

발 간 등 록 번 호

해사법규 시험대비

2026. 9.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rea Law Service Center

목 차

선박법규

1. 선박법
2. 선박법 시행령
3. 선박법 시행규칙
4. 선박안전법
5. 선박안전법 시행령
6.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7. 어선법
8. 어선법 시행령
9. 어선법 시행규칙
10. 국제선박등록법
11.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12.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선원법규

1. 선원법
2. 선원법 시행령
3. 선원법 시행규칙
4.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5. 선박직원법
6. 선박직원법 시행령
7.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선박교통관련법규

1. 해사안전기본법
2.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3.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4.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5.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8.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 도선법
11. 도선법 시행령
12. 도선법 시행규칙

해양환경관련법규

1. 해양환경관리법
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3.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4.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해난관련법규

1.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2.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5.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상레저관련법규

1. 수상레저안전법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3.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4. 유선 및 도선 사업법
5.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9.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수산관련법규

1. 수산업법
2. 수산업법 시행령
3. 선박안전 조업규칙

해운항만관련법규

1. 해운법
2. 해운법 시행령
3. 해운법 시행규칙
4. 항만운송사업법
5.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6.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7. 항만법

8. 항만법 시행령
9. 항만법 시행규칙
10. 어촌·어항법
11. 어촌·어항법 시행령
12.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해상보안 및 경비관련법규

1.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해양경비법
5. 해양경비법 시행령
6.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해상주권관련법규

1. 영해 및 접속수역법
2.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3.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4.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선박법규

1. 선박법
2. 선박법 시행령
3. 선박법 시행규칙
4. 선박안전법
5. 선박안전법 시행령
6.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7. 어선법
8. 어선법 시행령
9. 어선법 시행규칙
10. 국제선박등록법
11.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12.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선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57호, 2022. 6. 10.,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51 - 773 - 5815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의 국적에 관한 사항과 선박톤수의 측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사(海事)에 관한 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해상(海上) 질서를 유지하여, 국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선: 기관(機關)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선체(船體)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한다]과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2. 범선: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부선: 자력항행능력(自力航行能力)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② 이 법에서 “소형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총톤수 20톤 미만인 기선 및 범선
2. 총톤수 100톤 미만인 부선

[전문개정 2009. 12. 29.]

제2조(한국선박)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대한민국 선박(이하 “한국선박”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
2.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선박
3.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사법인(商事法人)이 소유하는 선박
4.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제3호 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전문개정 2009. 12. 29.]

제3조(선박톤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선박톤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총톤수: 「1969년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및 협약의 부속서(附屬書)에 따라 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 그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2. 총톤수: 우리나라의 해사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3. 순톤수: 협약 및 협약의 부속서에 따라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용으로 제공되는 선박 안에 있는 장소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4. 재화중량톤수: 항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한도에서 선박의 여객 및 화물 등의 최대적재량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 ② 제1항 각 호의 선박톤수의 측정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2. 29.]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선박톤수의 측정기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5조(국기의 게양) ① 한국선박이 아니면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할 수 없다. <개정 2014. 3. 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항만에 출입하거나 머무는 한국선박 외의 선박은 선박의 마스트나 그 밖에 외부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신설 2014. 3. 24.>
[전문개정 2009. 12. 29.]

제6조(불개항장에서의 기항과 국내 각 항간에서의 운송금지) 한국선박이 아니면 불개항장(不開港場)에 기항(寄港)하거나, 국내 각 항간(港間)에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을 할 수 없다. 다만, 법률 또는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해양사고 또는 포획(捕獲)을 피하려는 경우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2. 29.]

제7조(선박톤수 측정의 신청) ①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대한민국에 선적항(船籍港)을 정하고 그 선적항 또는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해양수산청장”이라 한다)에게 선박의 총톤수의 측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선박톤수를 측정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③ 외국에서 취득한 선박을 외국 각 항간에서 항행시키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그 선박톤수의 측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선박톤수의 측정을 위한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2. 29.]

제8조(등기와 등록) ①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선박은 선박의 등기를 한 후에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31.>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이를 선박원부(船舶原簿)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선박국적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③ 선박국적증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④ 선박의 등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8조의2(소형선박 소유권 변동의 효력) 소형선박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8조의3(압류등록) 소형선박 등록관청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서 압류등록을 위촉하거나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행정관청에서 압류등록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형선박의 등록원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고 선박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31., 2016. 12. 27.>

[전문개정 2009. 12. 29.]

제9조(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신청) ① 국내에서 선박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관할구역에 선적함을 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취득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臨時船舶國籍證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② 외국에서 선박을 취득한 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그 취득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8. 12. 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선박을 취득한 자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당 선박의 취득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박의 취득지에서 출항한 후 최초로 기항하는 곳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8. 12. 31.>

④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2. 29.]

제10조(국기 게양과 항행) 한국선박은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는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거나 항행할 수 없다. 다만, 선박을 시험운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3. 24.>

[전문개정 2009. 12. 29.]

제11조(국기 게양과 표시) 한국선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고 그 명칭, 선적함, 흘수(吃水)의 치수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2. 29.]

제12조 삭제 <1999. 4. 15.>

제13조(국제통수증서 등) ① 길이 24미터 이상인 한국선박의 소유자[그 선박이 공유(共有)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박관리인, 그 선박이 대여된 경우에는 선박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국제통수증서(국제총통수 및 순통수를 적은 증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받아 이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는 그 선박을 국제항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12. 29.,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제통수증서의 발급신청을 받으면 해당 선박에 대하여 국제총통수 및 순통수를 측정한 후 그 신청인에게 국제통수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9., 2013. 3. 23.>

③ 삭제<1999. 4. 15.>

④ 한국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9., 2018. 12. 31.>

1.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선박의 길이가 24미터 미만으로 된 때

⑤ 길이 24미터 미만인 한국선박의 소유자가 그 선박을 국제항해에 종사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국제통수확인서[국제총통수 및 순통수를 적은 서면(書面)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받을 수 있다.<개정 2009. 12. 29., 2013. 3. 23.>

⑥ 국제통수확인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제통수증서”는 “국제통수확인서”로, “길이가 24미터 미만”은 “길이가 24미터 이상”으로 본다.<개정 2009. 12. 29.>

⑦ 국제통수증서와 국제통수확인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 12. 29., 2013. 3. 23.>

[제목개정 2009. 12. 29.]

제14조 삭제 <1999. 4. 15.>

제15조 삭제 <1999. 4. 15.>

제16조 삭제 <1999. 4. 15.>

제17조 삭제 <1999. 4. 15.>

제18조(등록사항의 변경) 선박원부에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19조 삭제 <1999. 4. 15.>

제20조 삭제 <1999. 4. 15.>

제21조 삭제 <1999. 4. 15.>

제22조(말소등록) ① 한국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1. 선박이 멸실·침몰 또는 해체된 때
2. 선박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3. 선박이 제26조 각 호에 규정된 선박으로 된 때
4. 선박의 존재 여부가 90일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경우 선박소유자가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선박의 말소등록신청을 최고(催告)하고, 그 기간에 말소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선박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전문개정 2009. 12. 29.]

제23조 삭제 <1999. 4. 15.>

제24조 삭제 <1999. 4. 15.>

제25조 삭제 <1999. 4. 15.>

제26조(일부 적용 제외 선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8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6. 15., 2014. 3. 24., 2022. 6. 10.>

1. 군함, 경찰용 선박
2. 총톤수 5톤 미만인 범선 중 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범선
3. 총톤수 20톤 미만인 부선
4. 총톤수 20톤 이상인 부선 중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허가나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은 제외한다.
5.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6. 「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선
7.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浚渫船)
8.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고무보트 및 세일링요트

[전문개정 2009. 12. 29.]

제26조의2 삭제 <2007. 8. 3.>

제27조 삭제 <1999. 4. 15.>

제28조(외국에서의 사무처리) 외국에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영사가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31.>

[전문개정 2009. 12. 29.]

제29조(「상법」의 준용)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항행용으로 사용되는 선박에 관하여는 「상법」 제5편 해상(海商)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29조의2(선박톤수 측정 등의 대행)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船級法人)(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31.>

1. 제7조에 따른 선박톤수의 측정

2. 제13조에 따른 국제총톤수, 순톤수의 측정,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의 발급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단 및 선급법인(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1. 공단: 선급법인에 대행하게 하는 선박 외의 선박

2. 선급법인: 선급법인에 선급의 등록을 하였거나 등록을 하려는 선박

③ 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대행기관이 보고한 대행 업무에 관하여 그 처리 내용을 확인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30조(수수료) ① 이 법에 따라 허가, 인가, 등록, 톤수의 측정 또는 증서의 발급 등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9조의2에 따라 대행기관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대행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요율 등을 정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행기관이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해당 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31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31.>

[전문개정 2009. 12. 29.]

제31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2. 29.]

제32조(벌칙) ① 한국선박이 아니면서 국적을 사칭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거나 한국선박의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로 항행한 선박의 선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선박의 포획을 피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3. 27.>

② 한국선박이 국적을 사칭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기 외의 기장(旗章)을 게양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죄질이 중(重)한 것은 해당 선박을 몰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33조(벌칙) 제6조 또는 제10조를 위반한 선박의 선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3. 27.>

[전문개정 2009. 12. 29.]

제34조(벌칙) ① 공무원을 속여 선박원부에 부실(不實) 등록을 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3. 27.>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35조(과태료)** ① 제11조를 위반하여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지 아니한 선장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소형선박의 선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12. 31.>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9조에 따라 임시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0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소형선박만 해당한다)
 3. 제11조에 규정된 사항을 선박에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제톤수증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선박을 국제항해에 종사하게 한 경우
 5. 제13조제4항(제13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박의 멸실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8조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2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말소등록신청의 최고를 받고 그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13. 3. 23., 2018. 12. 31.>
 [전문개정 2009. 12. 29.]

제36조 삭제 <1999. 4. 15.>

제37조 삭제 <1999. 4. 15.>

- 제38조(적용규정)** ①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제32조·제33조 및 제35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 12. 29.>
- ② 삭제<1999. 4. 15.>
- ③ 선박관리인 또는 상사회사나 그 밖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清算人)에게는 제35조제2항을 적용한다.<개정 2009. 12. 29.>
 [제목개정 2009. 12. 29.]

제39조(「형법」 공범례의 적용 배제) 제32조 및 제33조에서 정한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부칙 <제3641호, 1982.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선박적량측정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현존선에 대한 선박톤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된 한국선박(이하 “**現存船**”이라 한다)에 관한 총톤수의 측정기준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르되, 해당 선박 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를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후에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리(이하 “**特定修理**”라 한다)를 한 현존선에 대하여는 최초의 특정수리에 따른 개측 또는 측정(이에 상당하는 **處分**을 포함한다)을 받은 날(이하 “**當初改測日**”이라 한다) 이후에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7. 8. 3.>

②현존선에 관한 순톤수의 측정기준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현존선에 대하여는 각각 당해 각호에 정하는 날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 시행후에 특정수리를 한 현존선(당해 **特定修理**가 행하여지는 날 이전에 第2號 또는 第3號에 정하는 **現存船**으로 된 것을 제외한다)은 당초개측일
2. 국제톤수증서를 교부받은 현존선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을 받은 날
3. 국제톤수확인서를 교부받은 현존선은 제13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을 받은 날

③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길이 24미터이상의 현존선에 대하여는 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12년을 경과하는 날(이 날 이전에 **特定修理**를 한 船舶에 대하여는 **當初改測日**)까지의 기간(이하 “**猶豫期間**”이라 한다)에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선박소유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예기간내라도 국제톤수증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제4조 (종전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의 경우 이외에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이나 기타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박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선박법 제36조”를 “선박법 제8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중 “총톤수 20톤미만”을 “총톤수 20톤미만”으로 한다.

②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중 “선박법 제21조”를 “선박법 제26조”로 한다.

제13조중 “적량”을 “총톤수”로 한다.

제16조 단서중 “5톤미만”을 “5톤미만”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중 “적량”을 “총톤수”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어선의 운반, 등기 및 등록에 관하여는 선박법 제2조,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내지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3조, 제35조, 제36조, 부칙 제3조와 동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어선의 톤수측정에 관하여는 선박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5조중 “어선적량측정”을 “어선의 총톤수측정”으로 한다.

③조선공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중 “선박법 제22조 및 제23조”를 “선박법 제12조 및 제27조”로 한다.

부칙 <제5454호, 1997. 12. 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809호, 1999. 2. 5.>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선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단서중 “해난”을 “해양사고”로 한다.

⑨내지1& 생략

부칙 <제5972호, 1999. 4. 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의 개정규정(同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새로 등록의 대상이 되는 船舶의 登録申請 및 이에 따른 船舶國籍證書交付의 경우에 한한다), 제2조제3호, 제26조의2의 개정규정(同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船籍證書交付의 대상이 되는 船舶의 船籍證書交付申請 및 이에 따른 船籍證書交付의 경우에 한한다) 및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규등록대상 선박의 벌칙적용에 관한 특례) 제1조의2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 등록 또는 선적증서교부의 대상이 되는 선박의 소유자 및 선장에 대한 제33조, 제36조제3호, 제4호 및 제38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6월이내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박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총톤수 20톤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이상의 부선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선박계류용·저장용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전단중 “ 제14조, 제21조, 제23조 내지 제25조, 제26조 ” 를 “ 제26조 ” 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 대한민국선박 ” 은 “ 대한민국어선 ” 으로, “ 한국선박 ” 은 “ 한국어선 ” 으로, “ 선박 ” 은 “ 어선 ” 으로, “ 선박취득지 ” 는 “ 어선취득지 ” 로, “ 선박관리인 ” 은 “ 어선관리인 ” 으로, “ 선박소유자 ” 는 “ 어선소유자 ” 로 본다.

제37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 한국선박 ” 은 “ 한국어선 ” 으로 본다.

제49조중 “ 제35조, 제36조제2호(同法 第13條第1項、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國際噸數證書를 비치, 반환 또는 申告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를 “ 제35조제1항, 제35조제2항 제2호 및 제3호 ” 로 한다.

부칙 <제8221호, 2007. 1. 3.> (선박안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檢査協會”라 한다) ” 를 “ 「선박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 으로, “ 동법 제8조 ” 를 “ 동법 제60조제2항 ” 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항제1호중 “ 검사협회 ” 를 각각 “ 공단 ” 으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부칙 <제8621호, 2007. 8. 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적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선적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 제1조의2제3호 ” 를 “ 제1조의2제1항제3호 ” 로 한다.

②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 제1조의2 ” 를 “ 제1조의2제1항 ” 으로 한다.

③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 제1조의2 ” 를 “ 제1조의2제1항 ” 으로 한다.

④ 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 제1조의2제3호 ” 를 “ 제1조의2제1항제3호 ” 로 한다.

⑤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2호 중 “ 제26조의2제1항 ” 을 “ 제8조제1항 ” 으로 하고, 제134조 중 “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선박에 대하여 ” 를 “ 제8조제1항에 따라 소형선박으로 ” 로 한다.

⑥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 제26조 및 제26조의2 ” 를 “ 제8조 ” 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선박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 、 <생략> 、 、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43> 까지 생략

<644>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제9조제4항, 제11조, 제13조제7항, 제29조의2제3항 및 제30조제1항 본문 중 “ 해양수산부령 ” 을 각각 “ 국토해양부령 ” 으로 한다.

제6조 단서, 제13조제1항 · 제2항 및 제5항, 제28조,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30조제2항 전단,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5조제3항 중 “ 해양수산부장관 ” 을 각각 “ 국토해양부장관 ”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 지방해양수산청장(地方海洋水産廳出張所長을 포함 한다. 이하 "地方廳長"이라 한다) ” 을 “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해양항만청장"이라 한다) ” 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8조,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제3항 중 “ 지방청장 ” 을 각각 “ 지방해양항만청장 ” 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지방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1조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64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007호, 2008. 3. 28.> (어선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6호 중 “제2조제1항 각 호”를 “제2조제1호 각 목”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9870호, 2009. 12. 29.>

제2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선박법」 제26조제4호 본문에 따른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0219호, 2010. 3. 31.> (지방세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2! 까지 생략

2@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0799호, 2011. 6. 15.> (수상레저안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8호 중 “모터보트、수상오토바이、고무보트 및 스쿠터”를 “수상오토바이、모터보트、고무보트 및 요트”로 한다.

부칙 <제11690호,2013. 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7>까지 생략

<598>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4항, 제11조, 제13조제7항, 제29조의2제3항 및 제30조제1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6조 단서, 제13조제1항·제2항·제5항, 제28조,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0조제2항 전단,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5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9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537호,2014.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전단 중 “제9조제2항·제3항”을 “제9조제2항·제3항(대한민국 영사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3266호,2015. 3.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76호,2016. 12. 27.> (지방세징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중 “ 「지방세기본법」 ” 을 “ 「지방세징수법」 ” 으로 한다.

2^ 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151호,2018.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지방해양수산청장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60호,2018. 12. 3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같은 법 ” 을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선박안전법」 ” 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8957호,2022. 6. 10.>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8호 중 “ 같은 법 제30조 ” 를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 ” 로, “ 요트 ” 를 “ 세일링요트 ” 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선박법 시행령

[시행 2019. 10. 8.] [대통령령 제30106호, 2019. 10. 8.,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51 - 773 - 5815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 31.]

제2조(선적항) ① 「선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선적항(船籍港)은 시·읍·면의 명칭에 따른다.

② 선적항으로 할 시·읍·면은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 접한 곳으로 한정한다.

③ 선적항은 선박소유자의 주소지에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닌 시·읍·면에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2.>

1. 국내에 주소가 없는 선박소유자가 국내에 선적항을 정하려는 경우
2. 선박소유자의 주소지가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 접한 시·읍·면이 아닌 경우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3조제1항에 따라 선박등록특구로 지정된 개항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적항으로 정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소유자의 주소지 외의 시·읍·면을 선적항으로 정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0. 6. 10.]

제2조의2(소형선박의 압류등록)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하며,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의3에 따라 소형선박에 대한 압류등록을 위촉받았을 때에는 선박원부(船舶原簿)에 압류등록을 하고,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8.>

[전문개정 2010. 6. 10.]

제3조(국기 게양과 선박국적증서 등의 비치 면제) ① 선박이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국경일, 그 밖에 국가적 행사가 있는 날. 다만, 외국의 국가적 행사일에는 그 나라의 항구에 정박하는 때로 한정한다.
2. 제1호의 경우 외에 축의(祝意) 또는 조의(弔意)를 표할 경우
3. 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의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선박이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항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시험운전을 하려는 경우
2. 총톤수의 측정을 받으려는 경우
3. 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의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0. 6. 10.]

제4조 삭제 <2008. 1. 31.>

제5조 삭제 <2008. 1. 31.>

제6조 삭제 <1999. 10. 11.>

제7조 삭제 <1999. 10. 11.>

제8조 삭제 <1999. 10. 11.>

제9조 삭제 <1999. 10. 11.>

제10조 삭제 <2008. 1. 31.>

제11조 삭제 <2008. 1. 31.>

제11조의2(대행 업무의 협의 등)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공단 또는 선급법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5. 28.>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이 공단 또는 선급법인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업무대행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대행하는 업무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6. 10.]

제12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9. 5. 28.>

1. 법 제6조 단서에 따른 한국선박이 아닌 선박의 불개항장예의 기항(寄港) 허가 또는 국내 각 항간(港間)에서의 여객과 화물의 운송허가
2. 법 제13조에 따른 국제총톤수 또는 순톤수의 측정,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의 발급

3. 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행조치 및 이와 관련된 업무, 대행 업무에 관한 보고의 수리, 대행 업무 처리 내용의 확인 및 필요한 조치

4. 법 제3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전문개정 2010. 6. 10.]

제1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선박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에 따른 변경등록(선적항 변경등록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무

3. 법 제22조에 따른 말소등록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 3. 27.]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전문개정 2011. 4. 4.]

부칙 <제11143호, 1983. 6. 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교통부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의 폐지등) ① 소형선박의선적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② 이 영 시행전에 소형선박의선적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선적증서는 이 영에 의하여 교부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제6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선박안전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선확인공무원의 증표발행

제4조 (항행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항행인가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임시항행허가로 본다.

부칙 <제14447호, 1994. 12. 23.>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69> 생략

<170> 선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6조제4항 및 제11조중 “교통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71> 내지 <205> 생략

부칙 <제15135호,1996. 8. 8.>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01>생략

<102> 선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제1호 및 제12조중 “해운항만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2항, 제6조제4항 및 제11조중 “교통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03> 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5379호,1997. 5. 24.>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1^ 생략

1& 선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지방해운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1* 내지3#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16573호,1999. 10. 11.>

이 영은 199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12호,2004. 3. 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00호,2007. 9. 28.>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선박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검사협회"라 한다) 또는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을 “「선박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으로, “검사협회 또는 선급법인 ”을 “공단 또는 선급법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검사협회 ”를 각각 “공단 ”으로 한다.

⑤ 부터 ⑮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0590호,2008. 1. 31.>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22호,2008. 2. 29.>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선박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하며,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 ”을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 해양사무소장을 포함하며,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 ”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을 “지방해양항만청장 ”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 ”을 “국토해양부령 ”으로 한다.

<61>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2195호,2010. 6.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29호, 2011. 4. 4.>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용적률 산정에 관한 적용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4443호, 2013. 3. 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6>까지 생략

<117> 선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18>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6922호, 2016. 1. 2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 까지 생략

2* 선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3조제1항”으로 한다.

2(부터 4^ 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27960호,2017. 3. 27.>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795호,2019. 5. 28.>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06호,2019. 10. 8.> (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선박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19. 10.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선박소유자가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9조에 따라 임시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등록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2) 등록신청 지연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1호		80 (소형선박은 20)	
나. 선박소유자(소형선박의 소유자로 한정한다)가 법 제10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2호	60	120	180
다. 선장(소형선박의 선장은 제외한다)이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1항	100	150	200
라. 선박소유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사항을 선박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3호	80 (소형선박은 20)	140 (소형선박은 60)	200 (소형선박은 80)
마. 선박소유자가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제통수증서를 갖추어 두지 않고 선박을 국제항해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4호	80 (소형선박은 20)	140 (소형선박은 60)	200 (소형선박은 80)
바. 선박소유자가 법 제13조제4항(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박의 멸실 등	법 제35조 제2항제5호	60 (소형선박은 20)	120 (소형선박은 50)	180 (소형선박은 70)

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 선박소유자가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6호	60 (소형선박은 20)	120 (소형선박은 50)	180 (소형선박은 70)
아. 선박소유자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말소등록 신청의 최고를 받고 그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7호	80 (소형선박은 20)	140 (소형선박은 60)	200 (소형선박은 80)



선박법 시행규칙

[시행 2025. 6. 2.] [해양수산부령 제736호, 2025. 6. 2.,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51 - 773 - 58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6. 10.]

제2조(외국선박의 불개항장에의 기항 등의 허가신청) 「선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 따라 불개항장에 기항(寄港)하거나 국내 각 항간(港間)에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불개항장 기항 등 허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불개항장 또는 여객의 승선지나 화물의 선적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인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2019. 5. 29.>

[전문개정 2010. 6. 10.]

제2장 선박톤수 측정의 신청

제3조(총톤수의 측정신청)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선박의 총톤수 측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 총톤수 측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하며,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나 해당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영사(이하 “영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8., 2019. 5. 29.>

1.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측정길이(이하 “측정길이”라 한다)가 24미터 이상인 선박
 - 가. 일반배치도
 - 나. 선체선도(船體線圖)(제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중앙횡단면도
 - 라. 강재(재료)배치도
 - 마. 상부구조도

바. 제4조제1항에 따른 총톤수계산서(제6조에 따라 총톤수의 부분측정을 받은 선박으로 한정한다)

사. 선체 외면에 붙어 있는 구조물의 설계도서(총톤수의 계산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2. 측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선박

가. 선체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없음

나. 측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기선(가목의 선박은 제외한다)과 범선: 제1호가목의 서류
다. 가목 및 나목의 선박 외의 선박: 제1호가목 및 다목의 서류

3. 수면비행선박: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사목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선박의 총톤수 측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해당 선박의 조선지(造船地)·조선자(造船者)·진수일(進水日) 및 선박원명(船舶原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 6. 10.]

제4조(총톤수의 측정 및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의 발급 등) ①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선박의 총톤수를 측정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총톤수계산서(이하 “총톤수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②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제3호에 해당하는 선박인 경우에는 부분측정을 받은 부분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총톤수를 측정하지 아니하고 총톤수계산서를 작성하거나 제2항에 따른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9.>

1. 「1969년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우리나라와 국교를 수립한 외국정부(이하 “외국정부”라 한다) 또는 해당 외국정부가 공인한 기관으로부터 총톤수의 측정을 받은 선박

2.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총톤수의 측정을 받은 선박

3. 제6조에 따라 부분측정을 받은 선박

[전문개정 2010. 6. 10.]

제5조(총톤수의 개측신청) ① 선박의 구조변경 등으로 총톤수가 변경된 선박의 소유자는 해당 선박의 선적항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이나 해당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영사에게 선박의 총톤수의 개측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박 총톤수의 개측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 총톤수 측정 신청서에 변경된 부분의 구조 및 배치 등에 관한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청장 또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측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측정”은 “개측”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6. 10.]

제6조(총톤수의 부분측정 신청) ① 대한민국 선박(이하 “한국선박”이라 한다)으로 등록할 목적으로 건조 중인 선박의 소유자는 해당 건조 장소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방청장 또는 영사에게 총톤수의 부분측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총톤수의 부분측정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측정”은 “부분측정”으로 본다.

③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총톤수계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10.]

제7조(재화중량톤수의 측정신청)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화중량톤수 측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이나 해당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또는 제5조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 또는 총톤수의 개측을 받은 자가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만 제출한다.

<개정 2012. 6. 26.>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

3. 중앙횡단면도

4. 배수량등곡선도

5. 변경된 부분의 구조 및 배치 등에 관한 설계도서(재화중량톤수 개측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선체 외면에 붙어 있는 구조물의 설계도서(재화중량톤수의 계산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화중량톤수를 측정 또는 개측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4.>

③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2항에 따라 재화중량톤수를 측정 또는 개측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총톤수”는 “재화중량톤수”로,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는 “재화중량톤수증서”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증서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청장이나 영사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3. 10. 24.>

1. 재화중량톤수증서를 훼손한 경우: 해당 재화중량톤수증서

2. 재화중량톤수증서를 분실한 경우: 분실 사유서

⑥ 제5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받은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재화중량톤수증서를 신청인에게 재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13. 10. 24.>

⑦ 해당 선박의 선적항 외의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이 제6항에 따라 재화중량톤수증서를 재발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보내야 한다.<신설 2013. 10. 24.>

[전문개정 2010. 6. 10.]

제8조(선박톤수 등의 측정 장소) ① 제3조 또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이하 이 조에서 “항만구역”이라 한다) 또는 「어촌·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이하 이 조에서 “어항구역”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선박의 구조 또는 항로의 상황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박을 항만구역 또는 어항구역까지 항행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선박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을 신청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구역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으며, 제6조에 따른 부분측정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건조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② 외국에서 선박톤수의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가 정하는 장소에서 한다.<개정 2013. 3. 24.>

[전문개정 2010. 6. 10.]

제9조(톤수 측정 관련 서류의 송부)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이 선박톤수를 측정 또는 개측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총톤수계산서 등 톤수 측정에 관한 서류를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10.]

제3장 선박의 등록

제10조(선박의 등록신청)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선박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공단 또는 선급법인(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2. 선박등기부 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에 따른 선박등기 대상 선박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지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1.>

[전문개정 2010. 6. 10.]

제11조(등록사항) ① 지방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선박의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선박원부(船舶原簿)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선박번호
2. 국제해사기구에서 부여한 선박식별번호(IMO번호)
3. 호출부호
4. 선박의 종류
5. 선박의 명칭
6. 선적항
7. 선질(船質)
8. 범선(帆船)의 범장(帆裝)
9. 선박의 길이[최소 형(型) 깊이의 85퍼센트의 위치에서 계획만재흘수선에 평행한 흘수선(吃水線) 전장(全長)의 96퍼센트와 그 흘수선상의 선수재(船首材)전면으로부터 타두재(舵頭材) 중심선까지의 거리 중 긴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10. 선박의 너비[선박 길이의 중앙에서 금속제 외판(金屬製 外板)이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늑골 외면(肋骨 外面) 간의 최대너비를 말하고, 금속제 외판 외의 외판이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체 외면(船體 外面) 간의 최대너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1. 선박의 깊이[선박 길이의 중앙에서 금속제 외판이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용골(龍骨)의 윗면으로부터, 금속제 외판 외의 외판이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용골의 아랫면으로부터 선측에 있어서의 상갑판의 아랫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12. 총톤수
13. 폐위장소(蔽圍場所)의 합계용적
 - 가. 상갑판 아래의 용적
 - 나. 상갑판 위의 용적
 - 1) 선수루(船首樓)의 용적
 - 2) 선교루(船橋樓)의 용적
 - 3) 선미루(船尾樓)의 용적
 - 4) 갑판실의 용적
 - 5) 그 밖의 장소의 용적
14. 제외 장소의 합계용적
 - 가. 선수루의 용적

나. 선교루의 용적

다. 선미루의 용적

라. 갑판실의 용적

마. 그 밖의 장소의 용적

15. 기관의 종류와 수

16. 추진기의 종류와 수

17. 조선지

18. 조선자

19. 진수일

20. 소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21. 선박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의 지분율

② 제1항의 선박원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10.]

제12조(선박국적증서의 발급) ① 지방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선박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선박국적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24.>

② 선박국적증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화중량톤수증서”는 “선박국적증서”로 본다. <신설 2013. 10. 24.>

[전문개정 2010. 6. 10.]

제13조(선박원부 등본·초본의 발급신청 등) ① 누구든지 지방청장에게 선박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선박원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본 또는 초본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선박원부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10.]

제14조(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신청) ① 법 제9조에 따라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신청서에 매매계약서 등 선박의 소유권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취득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 또는 영사(취득지를 관할하는 영사에게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초 도착지를 관할하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임시선박국적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임시선박국적증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화중량톤수증서”는 “임시선박국적증서”로 본다. <신설 2013. 10. 24.>

[전문개정 2010. 6. 10.]

제15조(선박국적증서 등의 영역서 발급) ① 제12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英譯書)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영역서 발급신청서를 선박국적증서 영역서 발급신청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고, 임시선박국적증서 영역서 발급신청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 또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선박국적증서를 확인(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 발급신청에만 해당한다)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1.>

②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임시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선박국적증서 영역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 영역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화중량톤수증서”는 “선박국적증서 영역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 영역서”로 본다. <신설 2013. 10. 24.>

[전문개정 2010. 6. 10.]

제4장 국기 게양과 선박의 표시 <개정 2010. 6. 10.>

제16조(국기의 게양) 한국선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선박의 뒷부분에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총톤수 50톤 미만이거나 최대속력이 25노트 이상인 선박은 조타실이나 상갑판 위쪽에 있는 선실 등 구조물의 바깥벽 양 측면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6., 2014. 11. 19., 2017. 7. 28.>

1. 대한민국의 등대 또는 해안망루(海岸望樓)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외국항을 출입하는 경우
3. 해군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의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지방청장이 요구한 경우

[전문개정 2010. 6. 10.]

제17조(선박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① 법 제11조에 따라 한국선박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과 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소형선박은 제3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선박의 명칭: 선수양현(船首兩舷)의 외부 및 선미(船尾) 외부의 잘 보이는 곳에 각각 10센티미터 이상의 한글(아라비아숫자를 포함한다)로 표시
2. 선적항: 선미 외부의 잘 보이는 곳에 10센티미터 이상의 한글로 표시
3. 흘수의 치수: 선수와 선미의 외부 양 측면에 선저(船底)로부터 최대흘수선(最大吃水線) 이상에 이르기까지 20센티미터마다 10센티미터의 아라비아숫자로 표시. 이 경우 숫자의 하단은 그 숫자가 표시하는 흘수선과 일치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선박의 명칭 등을 표시하기 곤란한 선박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선박의 명칭 등을 표시할 수 있다.
- ③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명칭 등을 표시할 장소를 따로 지정하거나 표시 장소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 ④ 선박에의 표시는 잘 보이고 오래가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표시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표시를 고쳐야 한다.
- [전문개정 2010. 6. 10.]

제5장 국제톤수증서 등 <개정 2010. 6. 10.>

제18조(국제톤수증서 등의 발급)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을 받은 자가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6.>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제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중앙횡단면도
 4. 강재(재료)배치도
 5. 상부구조도
 6. 선체 외면에 붙어 있는 구조물의 설계도서[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이하 “국제톤수”라 한다)의 계산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 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제톤수를 측정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국제톤수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 ③ 지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제톤수를 측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국제톤수증서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톤수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국제톤수의 측정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톤수”는 “국제톤수”로 본다.
- ⑤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화중량톤수증서”는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로 본다. <신설 2013. 10. 24.>

[전문개정 2010. 6. 10.]

제19조(국제톤수증서 등의 변경발급) ① 선박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적항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선박의 국제

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의 변경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8.>

1. 선박의 구조변경 등에 따른 국제톤수의 변경

2.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중 선박의 명칭、선박번호、호출부호 및 선적항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라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의 변경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변경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청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발급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선박국적증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2. 1. 18., 2018. 12. 28.>

1.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

2. 변경된 부분의 구조 및 배치 등에 관한 설계도서(제1항제1호만 해당한다)

3. 삭제<2018. 12. 28.>

③ 지방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제톤수를 개측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국제톤수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18., 2013. 3. 24.>

④ 제3항에 따른 국제톤수의 개측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 및 제1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톤수”는 “국제톤수”로, “측정”은 “개측”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6. 10.]

제20조(선박 멸실 등에 관한 신고)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선박의 멸실 등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선박 멸실 등 신고서를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10.]

제6장 선박등록사항의 변경과 말소

제21조(등록사항의 변경등록) ① 법 제18조에 따라 선박원부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선박원부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의 항행으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의 원본(제30조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증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6., 2025. 6. 2.>

1. 선박국적증서

2. 선박국적증서 영역서(발급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3.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해당 선박의 선적항이 다른 지방청장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그 변경등록

의 신청 서류를 보내야 하며, 해당 신청 내용 중 선적항을 다른 지방청장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시·읍·면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박원부와 그 부속 서류를 새로 정하려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보내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 서류 및 선박원부 등을 송부받았을 때에는 선박원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국적증서 영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10.]

제22조(지방청장의 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 ① 지방청장의 관할구역이 변경되어 선적항이 다른 지방청장의 관할에 속하게 된 경우 관할구역 변경 전의 지방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선박에 관한 선박원부와 그 부속 서류를 관할구역 변경 후의 지방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박원부 등을 받은 지방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청장의 변경 사실을 선박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10.]

제23조(선박의 말소등록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선박 말소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청장은 제2호에 따른 말소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선박에 관한 수출신고필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해당 선박의 수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 1. 18., 2012. 6. 26., 2018. 12. 28.>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말소등록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경우

가. 선박등기부 등본(등기대상 선박만 해당한다)

나. 압류권자·저당권자·공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의 등본(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선박의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해당 선박의 선박원부에 “말소”라는 표시를 한 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의 어선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려고 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박원부와 관련 서류를 「어선법」에 따라 등록하려는 어선등록관청에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등록을 말소한 선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박등록 말소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선박등록 말소확인서 발급신청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지방청장의 선박등록 말소확인서 또는 그 영역서는 각각 별지 제24호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4. 10. 6.>

[전문개정 2010. 6. 10.]

제7장 삭제 <2008. 2. 4.>

제24조 삭제 <2008. 2. 4.>

제25조 삭제 <2008. 2. 4.>

제26조 삭제 <2008. 2. 4.>

제27조 삭제 <2008. 2. 4.>

제28조 삭제 <2008. 2. 4.>

제29조 삭제 <2008. 2. 4.>

제8장 보칙

제30조(전자증서의 발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
2. 제7조제3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4. 제14조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국적증서
5.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영역서
6. 제18조제3항에 따른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

[본조신설 2023. 12. 27.]

제31조(등록사항 등의 통보) ① 지방청장은 법 제18조와 제22조에 따른 변경등록(선적항 변경 등록의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말소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선박이 등기된 등기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선박의 번호, 종류, 명칭, 선적항 및 총톤수
2. 선박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3. 선박등록 등의 날짜 및 사유

② 지방청장은 법 제8조, 법 제18조 및 법 제22조에 따라 선박의 등록,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대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10.]

제32조(외국에서의 사무처리 관련 서류의 송부) 법 제28조에 따라 영사가 외국에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의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 3. 24.>

[전문개정 2010. 6. 10.]

제33조(대행 업무의 보고) 대행기관은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선박총톤수 측정 등의 대행 실적을 매 반기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9.>

[전문개정 2010. 6. 10.]

제34조(수수료) ① 법 제30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선박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선박톤수의 측정 장소가 아닌 곳에서 선박톤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출장하는 경우에 선박소유자는 지방청장이 정하는 여비를 내야 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대행기관이 수수료의 요율 등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요율 등을 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게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수수료의 요율을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신설 2014. 10. 6.>

④ 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라 수렴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의 요율 등을 정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0. 6.>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요율 등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대행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수수료의 요율 등을 해당 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0. 6.>

[전문개정 2010. 6. 10.]

제35조 삭제 <2020. 4. 6.>

부칙 <제156호, 2000. 1. 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박건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선박건명서는 이 규칙에 의한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 어선법시행규칙중 다음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3호중 “선박법시행령 제4조제2항”을 “선박법 제26조의2”로 한다.

②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조 및 제53조중 “해운관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③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선박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7호, 2004. 8. 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항질서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호, 2006. 6. 26.> (행정정보 공유 및 문서감축을 위한 「기르는어업육성
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호, 2006. 11. 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1조제20호 및 제25조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선박원부의 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신청을 하거나 선적증서원부의 기재신청 또는 변경기재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
다.

부칙 <제386호, 2007. 10. 18.>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0호, 2007. 11. 23.>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검사협
회"라 한다) 또는 동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급법인 ”을 “ 「선박안전법」 제
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
급법인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 검사협회 ”를 “ 공단 ”으로 한다.
④ 부터 ⑭ 생략
제24조 생략

부칙 <제406호,2008. 2. 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적증서원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에 따른 선적증서원부의 기재사항은 제11조의 선박원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지방청장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에 따른 선적증서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제11조에 따른 선박원부에 옮겨 적어야 한다.

부칙 <제4호,2008. 3. 14.>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호,2009. 1.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6호,2010. 6.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호,2011. 4. 7.>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호,2011. 4. 1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7호,2012. 1. 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말소등록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선박의 말소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81호, 2012. 6.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기의 게양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출항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호, 2013. 3. 24.>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32조,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각각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⑭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49호, 2013. 10.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호, 2014. 6. 2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호, 2014. 10.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개항장 기항 등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출된 불개항장 기항 등 허가신청서의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0호,2014. 11. 19.>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127호,2014. 12. 31.> (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호,2017. 1. 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51호,2017. 7. 28.>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호,2018.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호,2019. 5.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 중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에 관한 부분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2호,2020. 4. 6.>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3호,2023. 12. 27.>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6호,2025. 6. 2.>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선박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0.6.10>

선박톤수 측정 수수료(제34조제1항 관련)

1. 총톤수 측정 수수료

(단위: 원)

수수료의 종류 총톤수의 구분		측정 및 전부개측	부분측정 및 일부개측	
5톤 미만		750	750	
5톤 이상	10톤 미만	1,500		
10톤 이상	20톤 미만	2,250		
20톤 이상	50톤 미만	2,500	1,500	
50톤 이상	100톤 미만	4,000		
100톤 이상	300톤 미만	6,000	2,000	
300톤 이상	500톤 미만	8,000		
500톤 이상	1,000톤 미만	10,000	3,000	
1,000톤 이상	2,000톤 미만	13,000		
2,000톤 이상	3,000톤 미만	16,000	5,000	
3,000톤 이상	4,000톤 미만	20,000		
4,000톤 이상	6,000톤 미만	25,000		
6,000톤 이상	8,000톤 미만	30,000		
8,000톤 이상	10,000톤 미만	35,000		
10,000톤 이상	14,000톤 미만	40,000		
14,000톤 이상	20,000톤 미만	50,000		
20,000톤 이상	30,000톤 미만	60,000		
30,000톤 이상	50,000톤 미만	70,000		
50,000톤 이상		80,000		
비 고				
1. 상갑판하 전부, 구분갑판하 전부 또는 선체주부 전부의 용적 변경으로 인한 총톤수의 변경에 관한 개측은 전부개측으로 본다.				
2. 외국에서 총톤수를 측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3. 공휴일에 총톤수의 측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2. 재화중량톤수 측정 수수료

(단위: 원)

총톤수의 구분 \ 수수료의 종류		측정 및 전부개측	일부개측
500톤 미만		8,000	2,000
500톤 이상	1,000톤 미만	10,000	3,000

1,000톤 이상	2,000톤 미만	13,000	5,000
2,000톤 이상	3,000톤 미만	16,000	
3,000톤 이상	4,000톤 미만	20,000	
4,000톤 이상	6,000톤 미만	25,000	
6,000톤 이상	8,000톤 미만	30,000	
8,000톤 이상	10,000톤 미만	35,000	
10,000톤 이상	14,000톤 미만	40,000	
14,000톤 이상	20,000톤 미만	50,000	
20,000톤 이상	30,000톤 미만	60,000	
30,000톤 이상	50,000톤 미만	70,000	
50,000톤 이상		80,000	
비 고			
1. 상갑판하 전부, 구분갑판하 전부 또는 선체주부 전부의 용적 변경으로 인한 재화중량톤수의 변경에 관한 개측은 전부개측으로 본다.			
2. 외국에서 재화중량톤수를 측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3. 공휴일에 재화중량톤수의 측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3. 국제톤수 측정 수수료 (단위: 원)

수수료의 종류 총톤수의 구분		측정 및 전부개측		일 부 개 측	
		갑선박	을선박	갑선박	을선박
50톤 미만		1,500	2,500	900	1,500
50톤 이상 100톤 미만		2,400	4,000		
100톤 이상 300톤 미만		3,600	6,000	1,200	2,000
300톤 이상 500톤 미만		4,800	8,000		
500톤 이상 1,000톤 미만		6,000	10,000	1,800	3,000
1,000톤 이상 2,000톤 미만		7,800	13,000		
2,000톤 이상 3,000톤 미만		9,600	16,000	3,000	5,000
3,000톤 이상 4,000톤 미만		12,000	20,000		
4,000톤 이상 6,000톤 미만		15,000	25,000		
6,000톤 이상 8,000톤 미만		18,000	30,000		
8,000톤 이상 10,000톤 미만		21,000	35,000		
10,000톤 이상 14,000톤 미만		24,000	40,000		
14,000톤 이상 20,000톤 미만		30,000	50,000		
20,000톤 이상 30,000톤 미만		36,000	60,000		
30,000톤 이상 50,000톤 미만		42,000	70,000		
50,000톤 이상		48,000	80,000		

비 고

1. "갑선박"이란 총톤수의 측정을 받은 선박으로서 총톤수의 산정에 사용한 수치를 적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2. "을선박"이란 갑선박 외의 선박을 말한다.
3. 상갑판하 전부, 구분갑판하 전부 또는 선체주부 전부의 용적 변경으로 인한 국제톤수의 변경에 관한 개측은 전부개측으로 본다.
4. 기준홀수선 또는 여객정원수의 변경으로 인한 순톤수의 변경에 관한 개측은 일부개측으로 본다.
5. 외국에서 국제톤수를 측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6. 공휴일에 국제톤수의 측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 선박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1.4.7>

선박의 등록신청 등 수수료(제34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수수료
1. 제10조에 따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1,500
2. 제12조에 따라 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는 경우	500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박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1장당 100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500
5.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1,000
6.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의 발급 또는 그 변경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1장당 2,000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선박원부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500
8.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적항의 변경(지방청장의 관할구역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수반하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1,000
9. 제21조제3항에 따라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국적증서 영역서를 다시 발급받는 경우	500
10. 제23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00
11. 그 밖에 각종 증서를 다시 발급받는 경우	500

비고

1. 위 표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로 위 표의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각종 증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2. 수수료는 현금이나 수입인지로 납부하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선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5. 29.>

불개항장 기항 등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도로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등)		
신청내용	선박의 명칭		
	선박 소유자(선체용선자) / 선박운영자 / 대리점		
	국적	선적항	
	총톤수 / 재화중량톤수 톤 / 톤	선박의 용도	
	국제해사기구번호(IMO Number), 호출부호 또는 해상이동업무식별번호(MMSI)	기항하려는 항명	
	기항 시작일시 / 종료일시		
	기항하려는 이유(여객이나 운송화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원수나 수량 등을 적을 것)		
기항 중 선박 안전확보 조치, 승선자 무단 이탈방지 조치 및 해양오염방지 조치			

「선박법」 제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불개항장 기항 등에 관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〇〇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검토, 결재 지방해양수산청	→
		허가 및 발급 지방해양수산청	→
		수령 신청인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5. 29.>

(앞 쪽)

선박 총톤수 측정신청서			처리기간 10일(소형선박: 5일)
소유자	① 성명(대표자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④ 상호	(전화번호 :)	
⑤ 선박의 종류		⑥ 선박의 명칭(원명)	
⑦ 선적항		⑧ 총톤수	
⑨ 착공일		⑩ 진수일	
⑪ 조선지		⑫ 조선자	
⑬ 신청 사유	☐ 신조 ☐ 수입 ☐ 개축 ☐ 부분측정 ☐ 그 밖의 사유		
⑭ 총톤수의 측정을 받으려는 날짜 및 장소			
⑮ 비고			
「선박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5조제2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 대한민국영사 귀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한국선급회장			
※ 구비서류 1. 「선박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총톤수의 측정 및 총톤수의 부분측정 신청 가. 측정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선박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船體線圖)(「1969년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우리나라와 국교를 수립한 외국정부 또는 해당 외국정부가 공인한 기관으로부터 총톤수의 측정을 받은 선박은 제외합니다) (3) 중앙횡단면도 (4) 강재(재료)배치도 (5) 상부구조도 (6) 총톤수계산서(총톤수의 부분측정을 받은 선박만 해당합니다) (7) 선체 외면에 붙어 있는 구조물의 설계도서(총톤수의 계산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측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선박 (1) 선체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없음 (2) 측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기선[(1)의 선박은 제외합니다]과 범선: 일반배치도 (3) (1) 및 (2)의 선박 외의 선박: 일반배치도, 중앙횡단면도 다. 수면비행선박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 (3) 중앙횡단면도 (4) 강재(재료)배치도 (5) 선체 외면에 붙어 있는 구조물의 설계도서 비고: 「선박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총톤수의 측정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 또는 대한민국 영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조선지·조선자·진수일 및 선박원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2. 「선박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총톤수의 개축 신청: 변경된 부분의 구조 및 배치 등에 관한 설계도서			수수료 선박톤수 측정 수수료 표 또는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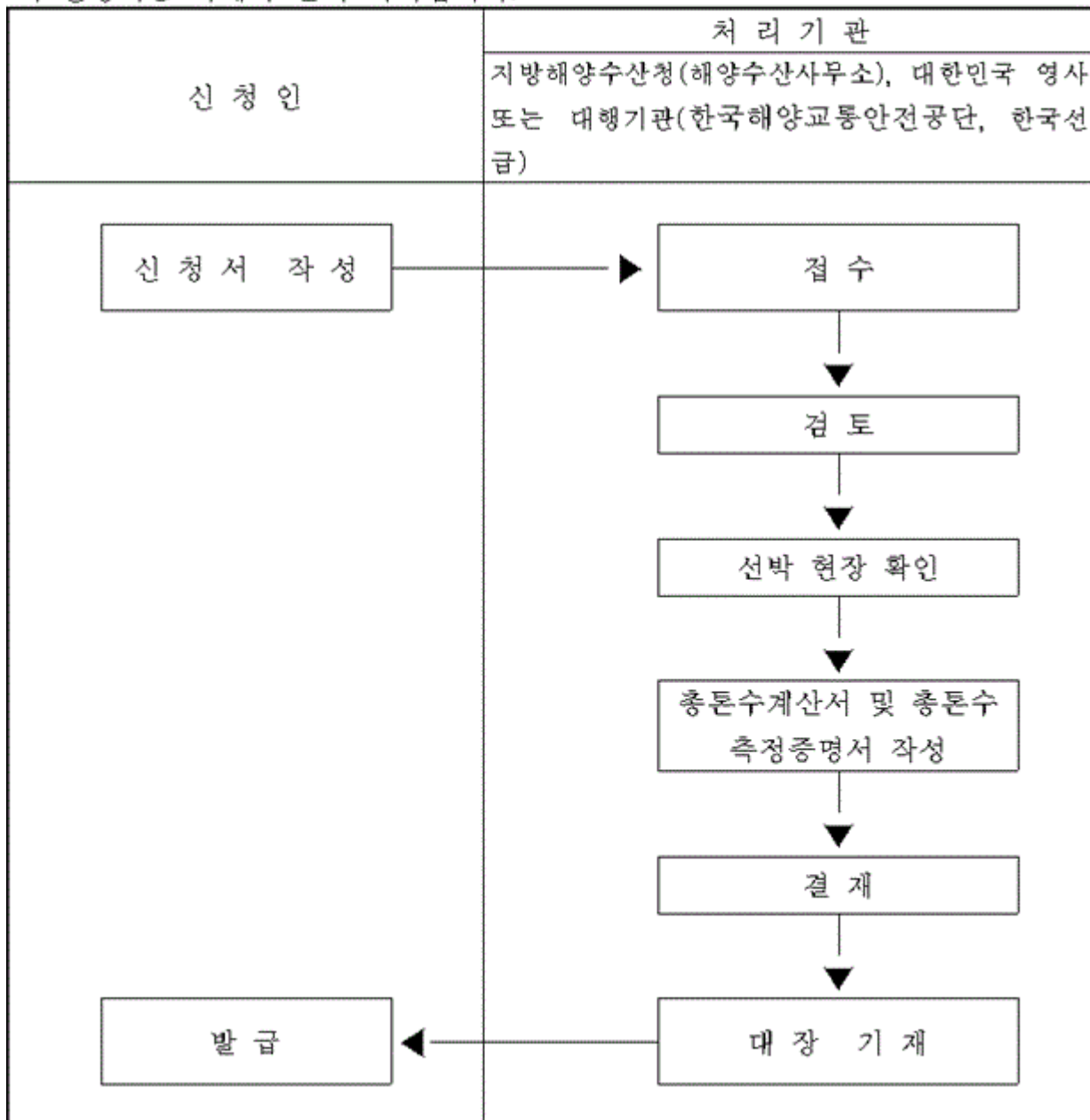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성요령-

1. ① 성명(대표자명)란의 경우 선박이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이름을 적고 “외 몇 명”이라고 부기할 것
2. ⑤ 선박의 종류란에는 “기선”, “범선” 또는 “부선”으로 적을 것
3. ⑥ 선박의 명칭(원명)은 국문 또는 외국어로 적고, (원명)의 난에는 외국선박이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취득 전 최근의 선박의 명칭을 적고,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이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으로 된 경우에는 총톤수 측정신청 전 최근 선박의 명칭을 적을 것
4. 검사 장소가 아닌 곳에서 측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그 사유 등을 적을 것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5. 29.>

제 호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				
소 유 자	성 명 (법인명)			
	주 소			
선박번호				
IMO번호		총톤수		톤
호출부호		폐위 장소의 합계용적		m ³
선박의 종류		상갑판 아래의 용적		m ³
선박의 명칭		상갑판 위의 용적	합계용적	m ³
선적항			선수루의 용적	m ³
선질			선교루의 용적	m ³
범선의 범장			선미루의 용적	m ³
추진기관			갑판실의 용적	m ³
추진기			그 밖의 장소의 용적	m ³
조선지		제외 장소의 합계용적		m ³
조선자		제외 장소의 용적	선수루의 용적	m ³
진수일			선교류의 용적	m ³
주 요 치 수	길이		선미루의 용적	m ³
	너비		갑판실의 용적	m ³
	깊이	그 밖의 장소의 용적	m ³	
「선박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3항 또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 대한민국영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직인 (한국선급회장)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5. 29.>

(앞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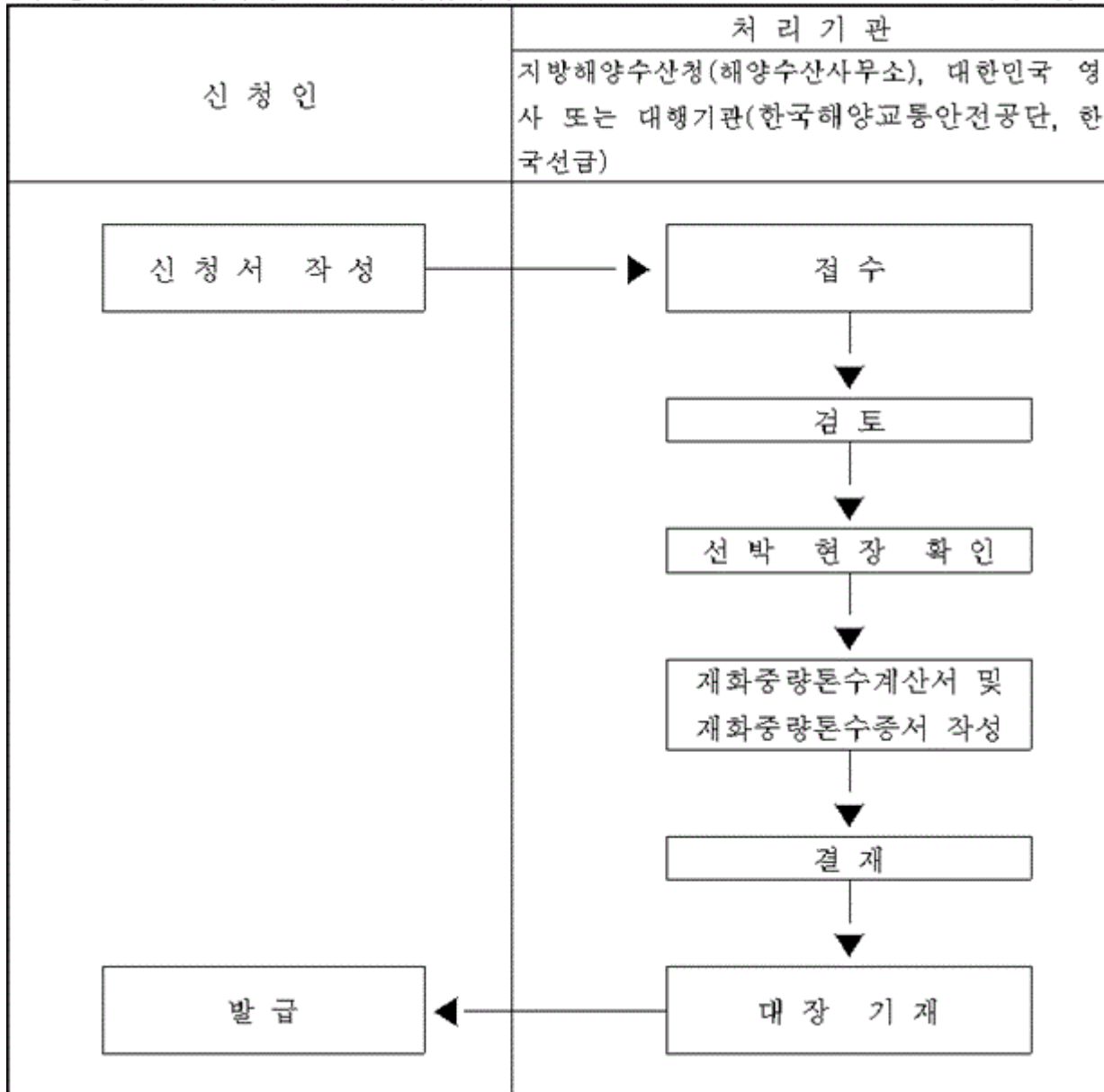
재화중량톤수 측정신청서						처리기간 5 일
소유자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상호		(전화:)			
선박번호				선박의 명칭		
선적항						
신청구분			☐ 신규측정 ☐ 개정			
측정을 받으려는 날짜 및 장소						
「선박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재화중량톤수의 측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 대 한 민 국 영 사 귀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한 국 선 급 회 장						
※ 첨부서류: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 3. 중앙횡단면도 4. 배수량등곡선도 5. 변경된 부분의 구조 및 배치 등에 관한 설계도서(재화중량톤수 개측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그 밖에 재화중량톤수의 계산과 관련되는 구조물이 있는 경우 그것을 나타내는 설계도서 비고: 제3조 또는 제5조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 또는 총톤수의 개측을 받은 자가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 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선박톤수 측정 수수료표 또는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릅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5. 29.>

증서번호 제 호
Certificate No.

재 화 중 량 톤 수 증 서

DEADWEIGHT TONNAGE CERTIFICATE

대한민국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y

선 명 Name of Ship	선박번호 또는 호 출 번 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IMO 번호 IMO Number	선적항 Port of Registry	총톤수 Gross Tonnage	연월일(주) *Date

(주) 킬이 거치되었거나 또는 유사한 건조단계에 있었던 일자 또는 개조를 한 날짜
*Date on which the keel was laid or the ship was at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or date on which the ship underwent alterations or modifications of a major character, as appropriate.

주요 치수

MAIN DIMENSIONS

길이 Length	너비 Breadth	선박의 중앙에서 상갑판까지 의 형 깊이 Moulded depth amid ships to the Upper Deck	선박의 중앙에서 기준홀수선 까지의 형 깊이 Moulded Depth amid ships to the Summer Load Line

선 박 의 톤 수

THE TONNAGE OF THE SHIP ARE

재화중량톤수

DEADWEIGHT TONNAGE

이 증서는 대한민국정부의 권한으로 재화중량톤수가 결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deadweight tonnages of this ship have been determin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에서 발행합니다.

(증서의 발행 장소) (발행일)

Issued at , the day of ,
(Place of issue of certificate) (date of issue)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대한민국영사

The Consul of the Republic of Korea

서명자는 이 증서를 발행함에 있어서 위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선언합니다.

The undersigned declares that he is duly authorized by the said Government to issue this certificate.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한국선급회장

President of Korean Register of Shipping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120g/m²)

■ 선박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19. 5. 29.>

[] 재화중량통수증서 [] 선박국적증서 [] 임시선박국적증서
 [] 선박국적증서 영역서 [] 임시선박국적증서 영역서
 [] 국제통수증서 [] 국제통수확인서

재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소유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주소(도로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등)		
	상호		
신청내용	선박의 명칭		
	선박번호	□□□-□□□□□□	IMO 번호 □□□□□□□□
	증서 번호		
	발급일		발급청
	신청 사유	[1]분실 [2]훼손	
	비고		

「선박법」 시행규칙(제7조제5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3항, 제18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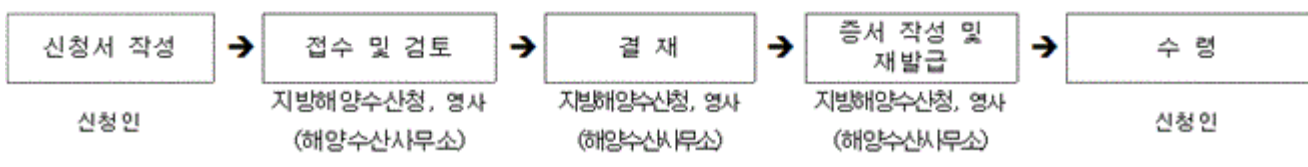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영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유서(분실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해당 증서(훼손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증서를 선박에 비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증서 재발급 신청 시에 증서의 사본을 제출하고, 재발급된 증서를 선박에 비치 후 이전 증서의 원본을 제출	수수료 500원
지방해양수산청장 확인사항	이전 증서 번호 등 이전 발급 사실 확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 선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5. 29.>

선박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소형선박의 총톤수측정을 포함하는 경우 7일)			
소유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도로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등)					
	상호					
신청내용	선박의 명칭					
	선박의 용도□□		(* 선박용도 코드 참고)			
	선적항		총톤수	톤		
	길이	m	너비	m	깊이	m
	공유자 유무□	[1]있음 [2]없음	호출부호			
	신청의 사유	[1]신조 [2]수입 [3]부활 [4]개조 [5]기타				
	선박번호	□□□-□□□□□□	IMO 번호	□□□□□□□□		

「선박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선박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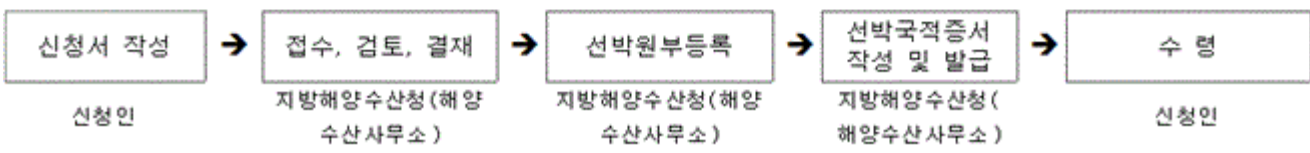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선박 총톤수 측정 증명서(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으로부터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선박등기부 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에 따른 선박등기 대상 선박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1. 선박등록 신청 : 1,500원 2. 증명발급 수수료 : 500원
지방해양수산청장 확인사할	법인 등기사할증명서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0.6.10>

(앞 쪽)

선박원부

1. 조선지		2. 조선자		3. 진수일: 년 월 일	
4. 선박번호					
IM O 번호					
5. 호출부호					
6. 선박의 종류					
7. 선박의 명칭					
8. 선적항					
9. 선질					
10. 범선의 범장					
11. 길이	m	m	m	m	m
12. 너비	m	m	m	m	m
13. 깊이	m	m	m	m	m
14. 총톤수	톤	톤	톤	톤	톤
15. 폐위장소의 합계용적	m ³	m ³	m ³	m ³	m ³
16. 상갑판 아래의 용적	m ³	m ³	m ³	m ³	m ³
17. 상갑판 위의 용적	m ³	m ³	m ³	m ³	m ³
18. 선수루의 용적	m ³	m ³	m ³	m ³	m ³
19. 선교루의 용적	m ³	m ³	m ³	m ³	m ³
20. 선미루의 용적	m ³	m ³	m ³	m ³	m ³
21. 갑판실의 용적	m ³	m ³	m ³	m ³	m ³
22. 그 밖의 장소의 용적	m ³	m ³	m ³	m ³	m ³
23. 제외장소의 합계용적	m ³	m ³	m ³	m ³	m ³
24. 선수루의 용적	m ³	m ³	m ³	m ³	m ³
25. 선교루의 용적	m ³	m ³	m ³	m ³	m ³
26. 선미루의 용적	m ³	m ³	m ³	m ³	m ³
27. 갑판실의 용적	m ³	m ³	m ³	m ³	m ³
28. 그 밖의 장소의 용적	m ³	m ³	m ³	m ³	m ³
29. 기관의 종류와 수					
30. 추진기의 종류와 수					
31. 등록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32. 기사					

210mm×297mm

(보존용지(1종) 70g/m²)

(뒤 쪽)

소 유 자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비고
공유자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지분	비고
저당권 설정 등록 등				
순위	구분	사항란	등록일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9. 5. 29.>

(앞 쪽)

(철 인)

선박국적증서

제 호

소유자	성명 (법인명)			
	주소			
선박번호		총톤수	톤	
IMO 번호		용적	폐위 장소의 합계용적——— m ³	
호출부호			상갑판 아래의 용적——— m ³	
선박의 종류			상갑판 위의 용적——— m ³	
선박의 명칭			선수루의 용적——— m ³	
선적항			선교루의 용적——— m ³	
선질			선미루의 용적——— m ³	
범선의 범장			갑판실의 용적——— m ³	
기관종류와 수			그 밖의 장소의 용적——— m ³	
추진기종류와 수			제외 장소의 합계용적——— m ³	
조선지			선수루의 용적——— m ³	
조선자			선교루의 용적——— m ³	
진수일			선미루의 용적——— m ³	
주요 치수	길이		m	갑판실의 용적——— m ³
	너비		m	그 밖의 장소의 용적——— m ³
	깊이	m		
비고				
위의 사항은 정확하며 이 선박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 인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m²)

(뒤 쪽)

공 유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지 분	비 고

■ 선박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 5. 29.>

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소유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도로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등)			
신청내용	선박의 종류		선박의 명칭	
	선적항		선질	
	범선의 범장		기관류의 종류와 수	
	추진기의 종류와 수		조선지	
	조선자		진수일	
	길이	미터	너비	미터
	깊이	미터	총톤수	톤
	신청 사유			
	비고			

「선박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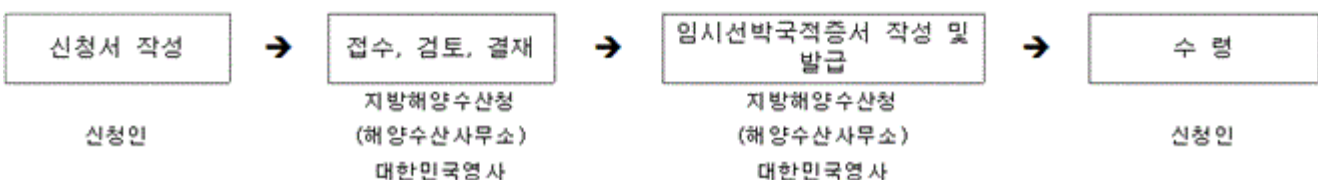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〇〇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 귀하
대한민국 영사

구비서류	매매계약서 등 선박의 소유권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500원
------	---------------------------------	-------------

처리절차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5. 29.>

제 호				
임시선박국적증서				
소 유 자	성 명 (법인명)			
	주 소			
선 박 의 종 류			조 선 지	
선 박 의 명 칭			조 선 자	
선 적 항			진 수 일	
선 질		주 요 치 수	길 이	
범 선 의 범 장			너 비	
기 관 의 종 류 와 수			깊 이	
추진기의 종류와 수			총 톤 수	
이 선박은 「선박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 대 한 민 국 영 사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재활용품))

■ 선박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 5. 29.>

영역서 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소유자	영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영문 주소(도로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등)		
신청내용	선박번호		
	선박의 명칭(영문)		
	신청 구분		
	[]선박국적증서 []임시선박국적증서		
	신청 사유		
비고			

「선박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 영역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〇〇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
대한민국 영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임시선박국적증서(임시선박국적증서 영역서 발급 신청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1,000원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영사 확인사항	선박국적증서(선박국적증서 영역서 발급 신청에만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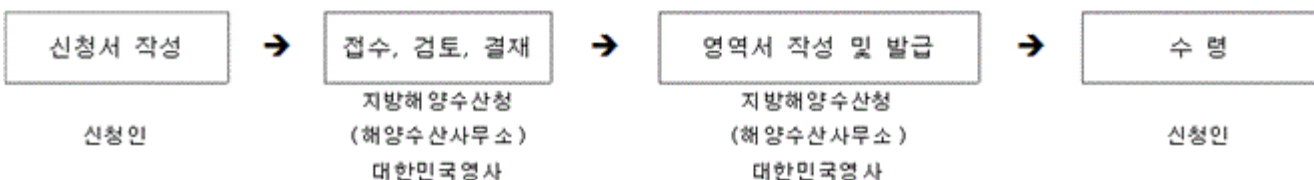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영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영사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0.6.10>

CERTIFICATE OF VESSEL'S NATIONALITY		
Cert. No. _____		
Owners	Name(Company): Address: _____	
Official Number	_____	Gross Tonnage _____ tons
IMO Number	_____	Total Capacity of Enclosed Spaces
Signal Letters	_____	_____ cubic metres
Kind of Vessel	_____	Under the Upper Deck
Name of Vessel	_____	_____ cubic metres
Port of Registry	_____	Closed-in Spaces above the Upper
Material of Hull	_____	Deck _____ cubic metres
Riggings(if a Sailing Vessel)	_____	Forecastle _____ cubic metres
Type and Number of Engines	_____	Bridge _____ cubic metres
Kind and Number of Propellers	_____	Poop _____ cubic metres
Where Built	_____	Deck House _____ cubic metres
Name of Builders	_____	Other Spaces _____ cubic metres
Date of Launch	_____	Total Capacity of Exempted Spaces
Main Dimensions	Length _____ metres Breadth _____ metres Depth _____ metres	_____ cubic metres Forecastle _____ cubic metres Bridge _____ cubic metres Poop _____ cubic metres Deck Houses _____ cubic metres Other Spaces _____ cubic metres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above described particulars are exact in all respect, and the above mentioned vessel is of Korean Nationality. The day of REPUBLIC OF KOREA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above is a true translation of "Certificate of Vessel's Nationality" of the above mentioned vessel. The day of (Signature) _____ (Official Position) _____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0.6.10>

CERTIFICATE OF VESSEL'S NATIONALITY(PROVISIONAL)

Cert. No _____

Owners	Name(Company):
	Address:

Kind of Vessel _____	Where Built _____	
Name of Vessel _____	Name of Builders _____	
Port of Registry _____	Date of Launch _____	
Material of Hull _____	Main Dimensions	Length _____ metres
Riggings(if a Sailing Vessel) _____		Breadth _____ metres
Type and number of Engines _____		Depth _____ metres
Type and number of Propellers _____	Gross Tonnage _____ ton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above mentioned vessel is of Korean Nationality.

The _____ day _____ of
REPUBLIC OF KOREA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above is a true translation of "Certificate of Vessel's Nationality(Provisional) of the above mentioned vessel.

The _____ day _____ of _____
(Signature) _____
(Official Position) _____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m²)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9. 5. 29.>

(앞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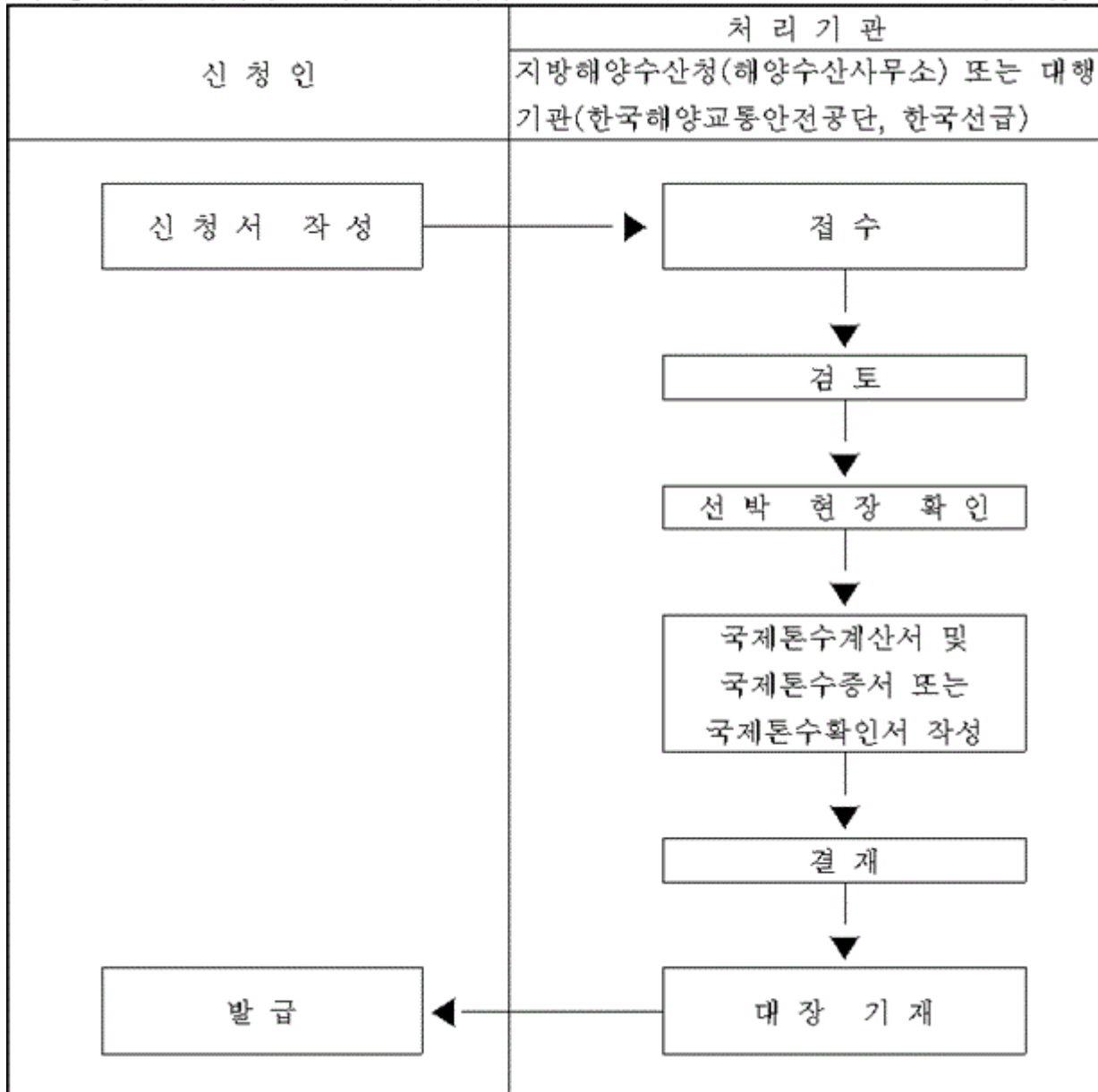
국제통수증서(국제통수확인서) 발급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소 유 자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상호	(전화:)		
선박번호			선박의 명칭(영문)	
신청구분		☐ 국제통수증서 ☐ 국제통수확인서		
측정을 받으려는 날짜 및 장소				
「선박법」 제13조제1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제통수증서(국제통수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귀하 한 국 선 급 회 장				
※ 첨부서류: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1969년 선박총통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 에 가입하고 우리나라와 국교를 수립한 외국정부 또는 해당 외국정부가 공인한 기관으로부터 총통수 측정을 받 은 선박은 제외합니다) 3. 중앙횡단면도 4. 강재(재료)배치도 5. 상부구조도 6. 선체 외면에 붙어 있는 구조물의 설계도서(국제총통수 및 순통수의 계산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비고: 제3조에 따라 총통수의 측정을 받은 자가 선적항을 관 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합니다.				수수료 선박통수 측정 수 수료표 또는 대행 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 릅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종))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9. 5. 29.>

(앞 쪽)

증서번호 제 호
Certificate No.

국제톤수증서(1969)

INTERNATIONAL TONNAGE CERTIFICATE(1969)

「1969년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같은 협약이 1982년 7월 18일에 발효된 대한민국의 권한으로 _____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onnage Measurement of Ships, 1969,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which the Convention came into force on the 18th day of July, 1982 by _____.

선 명 Name of Ship	선박번호 또는 호출번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IMO 번호 IMO Number	선적항 Port of Registry	연월일(주) *Date

(주) 길이 거처되었거나 또는 유사한 건조단계에 있었던 날짜[협약 제2조(6)] 또는 선박에 중요한 변경 또는 개조를 한 날짜[협약 제3조(2)(b)]

*Date on which the keel was laid or the ship was at similar stage construction[Article 2(6)] or date on which the ship underwent alterations or modifications of a major character[Article 3(2)(b)], as appropriate.

주요 치수

MAIN DIMENSIONS

길이 [협약 제2조(8)] Length [Article 2(8)]	너비[협약 부속서 제2규칙(3)] Breadth[Regulation 2(3)]	선박의 중양에서 상갑판까지의 깊이 [협약의 부속서 제2규칙(2)] Moulded Depth amidships to the Upper Deck[Regulation 2(2)]

선박의 톤수

THE TONNAGE OF THE SHIP ARE

국제총톤수

GROSS TONNAGE _____

순톤수

NET TONNAGE _____

이 증서는 「1969년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의 규정에 따라 이 선박의 톤수가 결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tonnages of this ship have been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f Tonnage Measurement of Ships, 1969.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에서 발행하였습니다.

(증서의 발행 장소)

(발행일)

Issued at _____, the _____ day of _____

(Place of issue of certificate)

(day of issue)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서명자는 이 증서를 발행함에 있어서 위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선언합니다.

The undersigned declares that he is duly authorized by the said Government to issue this certificate.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한국선급회장

President of Korean Register of Shipping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m²)

(뒤 쪽)

톤수에 포함되는 장소 SPACES INCLUDED IN TONNAGE					
국 제 총 톤 수 GROSS TONNAGE			순 톤 수 NET TONNAGE		
장소의 명칭 Name of Space	위치 Location	길이 Length	장소의 명칭 Name of Space	위치 Location	길이 Length
			여객의 정원수(협약의 부속서 제4규칙(1)) Number of passengers(Regulation 4(1)) 정원이 8명 이하인 여객실의 여객 정원수____ Number of passengers in cabins with not more than 8 berths_____ 그 밖의 여객 정원수_____ Number of other passengers_____		
제외 장소[협약의 부속서 I 제2규칙(5)] Excluded spaces [Regulation 2(5)] 위 장소 중 폐위 장소 및 제외 장소에 모두 해당되는 곳은 별표(*)로 표시한다. An asterisk(*) should be added to those spaces listed above which comprise both enclosed and excluded spaces.			형 홀수[협약의 부속서 I 제4규칙(2)] Moulded draught [Regulation 4(2)]		
최초의 측정일 및 측정 장소 _____ Date and place of original measurement _____					
전회의 측정일 및 측정 장소 _____ Date and place of last previous remeasurement _____					
비 고 REMARKS: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9. 5. 29.>

(앞 쪽)

증서번호 제 호
Certificate No.국 제 톤 수 확 인 서
TONNAGE CERTIFICATE

대한민국정부의 권한으로 _____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y _____.

선 명 Name of Ship	선박번호 또는 호출번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IMO 번호 IMO Number	선적항 Port of Registry	연월일(주) *Date

(주) 길이 거처되었거나 또는 유사한 건조단계에 있었던 날짜[협약 제2조(6)] 또는 선박에 중요한 변경 또는 개조를 한 날짜[협약 제3조(2)(b)]

*Date on which the keel was laid or the ship was at similar stage construction[Article 2(6)], or date on which the ship underwent alterations or modifications of a major character[Article 3(2)(b)], as appropriate.

주요 치수

MAIN DIMENSIONS

길이 [협약 제2조(8)] Length [Article 2(8)]	너비[협약 부속서 제2규칙(3)] Breadth[Regulation 2(3)]	선박의 중앙에서 상갑판까지의 깊이 [협약의 부속서 제2규칙(2)] Moulded depth amidships to the Upper Deck[Regulation 2(2)]

선 박 의 톤 수

THE TONNAGE OF THE SHIP ARE

국제총톤수

GROSS TONNAGE _____

순톤수

NET TONNAGE _____

이 증서는 「1969년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의 규정에 따라 이 선박의 톤수가 결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tonnages of this ship have been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f Tonnage Measurement of Ships, 1969.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에서 발행하였습니다.

(증서의 발행 장소) (발행일)

Issued at _____, the _____ day of _____
(Place of issue of certificate) (day of issue)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서명자는 이 증서를 발행함에 있어서 위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선언합니다.

The undersigned declares that he is duly authorized by the said Government to issue this certificate.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한국선급회장

President of Korean Register of Shipping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120g/m²)

(뒤 쪽)

톤수에 포함되는 장소 SPACES INCLUDED IN TONNAGE					
국 제 총 톤 수 GROSS TONNAGE			순 톤 수 NET TONNAGE		
장소의 명칭 Name of Space	위치 Location	길이 Length	장소의 명칭 Name of Space	위치 Location	길이 Length
			여객의 정원수(협약의 부속서 제4규칙(1)) Number of passengers(Regulation 4(1)) 정원이 8명 이하인 여객실의 여객 정원수 _____ Number of passengers in cabins with not more than 8 berths _____ 그 밖의 여객 정원수 _____ Number of other passengers _____		
제외 장소[협약의 부속서 I 제2규칙(5)] Excluded spaces [Regulation 2(5)] 위 장소 중 폐위 장소 및 제외 장소에 모두 해당되는 곳은 별표(*)로 표시한다. An asterisk(*) should be added to those spaces listed above which comprise both enclosed and excluded spaces.			형 흘수[협약의 부속서 I 제4규칙(2)] Moulded draught [Regulation 4(2)]		
최초의 측정일 및 측정 장소 _____ Date and place of original measurement _____					
전회의 측정일 및 측정 장소 _____ Date and place of last previous remeasurement _____					
비 고 REMAR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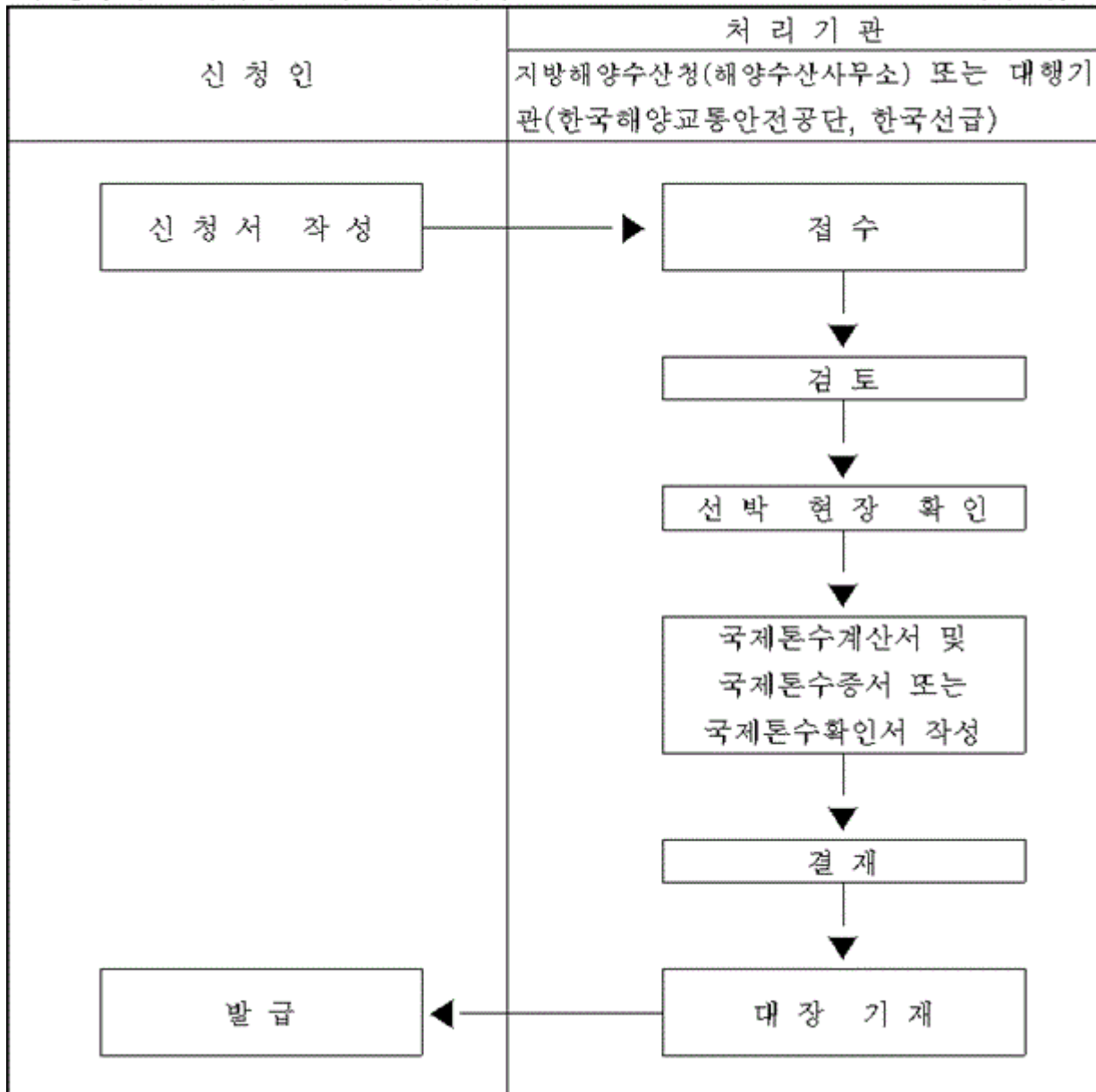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9. 5. 29.>

(앞 쪽)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변경발급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소 유 자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상호	(전화:)		
선박번호			선박의 명칭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신청구분		☐ 국제톤수증서 ☐ 국제톤수확인서		
신청사유				
측정을 받으려는 날짜 및 장소				
「선박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의 변경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귀하 한 국 선 급 회 장				
※ 구비서류 1.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 2. 변경된 부분의 구조 및 배치 등에 관한 설계도서(선박의 구조변경 등에 따라 국제톤수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1장당 2,000원 다만, 「선박법」 제29조의2에 따라 대항기관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항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선박국적증서(「선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중 선박의 명칭·선박번호·호출부호 및 선적항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선박국적증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선박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9. 5. 29.>

선박 멸실 등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소유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도로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등)		
신청내용	선박번호	선박의 명칭	
	선적항	국제통수증서 등의 번호	
	신고 사유	☐ 멸실·침몰 또는 해체 ☐ 국적상실 ☐ 선박의 존재 여부 불분명 ☐ 국제항해를 아니 함 ☐ 선박의 길이가 24미터 미만인 됨	
	비고		

「선박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선박멸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신고인	→	접수, 결재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	→
대장 정리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			

■ 선박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5. 6. 2.>

선박원부 변경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도로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등)		
신청내용	선박의 명칭		
	선박의 용도		선박번호
	IMO번호		호출부호
	선적항		총톤수 톤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선박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선박원부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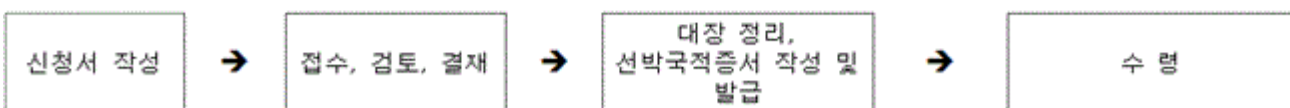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〇〇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선박국적증서 2. 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발급받은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선박의 항행으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의 원본(「선박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증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1. 선박원부 변경등록 신청: 500원 선적항 변경의 경우: 1,000원 2. 증서발급 수수료: 500원
-----------	---	---

처리절차



■ 선박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9. 5. 29.>

선박 말소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소 유 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도로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등)		
선 박	선박의 명칭	선박번호	
		IMO번호	
	선박의 용도	호출부호	
	선적항	총톤수 톤	
말소의 사유	[] 침몰 [] 해체 [] 수출 [] 그 밖의 사유		
말소의 구분	[] 선주 말소 [] 직권 말소		

비고(말소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선박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박의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법양수신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선박법」 제22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말소등록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선박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경우 가. 선박등기부 등본(등기대상 선박만 해당합니다) 나. 압류권자·저당권자·공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의 등본(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00원
지방법양수신청장 (해양수산사무소장) 확인 사항	수출신고필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수출신고필증(해당 선박의 수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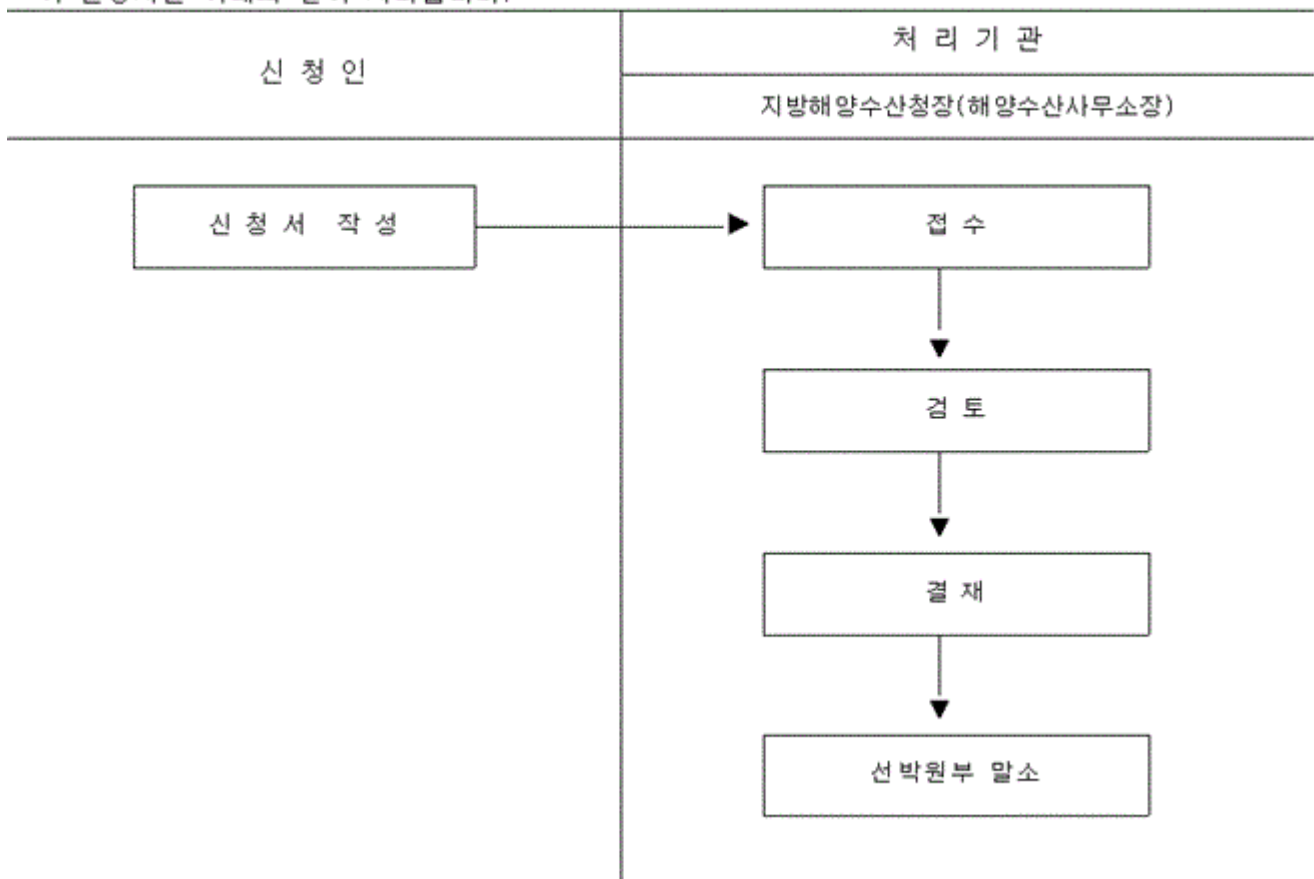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1호서식] 삭제 <2008.2.4>

[별지 제22호서식] 삭제 <2008.2.4>

선박등록 말소확인서 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청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도로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등) (전화번호 :)	
	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가 아닌 이해관계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청내용	선박의 명칭	
	선박번호	IMO번호
	총톤수 톤	말소 일자
	확인서 종류 [] 국문 [] 영문	
	신청 사유	

「선박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선박등록 말소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구분	구분	구분
----	----	----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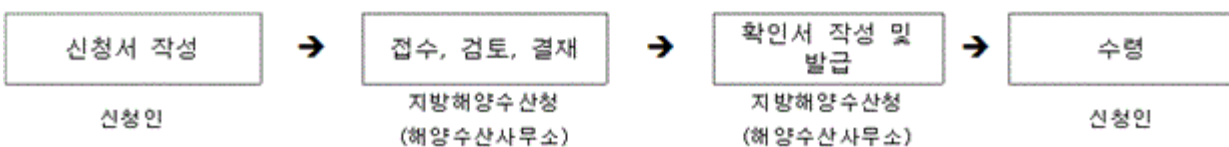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

귀하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500원
------	----	-------------

처리절차

210mm×297mm [백상지 80g/m²(재활용품)]

■ 선박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9. 5. 29.>

선박등록 말소확인서

제 호

말소당시 소유자	성명 (법인명)						
	주소						
선박번호				총톤수		톤	
IMO 번호				호출부호			
선박의 종류				선박의 명칭			
선적항				선질			
범선의 범장				기관의 종류와 수			
추진기의 종류와 수				조선지			
조선자				진수일			
주요치수	길이	m	너비	m	깊이	m	
말소일자							
말소사유							
이 선박은 「선박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선박등록이 말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선박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신설 2014.10.6.>

CONFIRMATION OF CANCELLATION OF VESSEL'S NATIONALITY

Confirmation Number :

Owner	Name (Company)						
	Address						
Official Number				Gross Tonnage		tons	
IMO Number				Signal Letters			
Kind of Vessel				Name of Vessel			
Port of Registry				Material of Hull			
Rigging (if a Sailing Vessel)				Type and Number of Engines			
Kind and Number of Propellers				Where Built			
Name of Builders				Date of Launch			
Main Dimensions		Length	m	Breadth	m	Depth	m
Date of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Reason of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It is hereby confirmed that the above described vessel was canceled from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Ship Act Enforcement Regulations, Article 23. The _____ day of _____ (Signature) _____ (Official Position) _____							

210mm×297mm(백상지 120g/㎡)



선박안전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34호, 2022. 12. 27.,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51 - 773 - 5833, 58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09. 12. 29., 2013. 3. 23., 2017. 10. 31., 2020. 2. 18.>

1. “선박”이라 함은 수상(水上) 또는 수중(水中)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과 이동식 시추선, 수상호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2. “선박시설”이라 함은 선체, 기관, 돛대, 배수설비 등 선박에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각종 설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선박용물건”이라 함은 선박시설에 설치, 비치되는 물건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4. “기관”이라 함은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보일러, 압력용기, 보조기관 등의 설비 및 이들의 제어장치로 구성되는 것을 말한다.
5. “선외기(船外機)”라 함은 선박의 선체 외부에 붙일 수 있는 추진기관으로서 선박의 선체로부터 간단한 조작에 의하여 쉽게 떼어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6. “감항성”이라 함은 선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7. “만재흘수선(滿載吃水線)”이라 함은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적재한도(積載限度)의 흘수선으로서 여객이나 화물을 승선하거나 싣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최대한도를 나타내는 선을 말한다.
8. “복원성”이라 함은 수면에 평형상태로 떠 있는 선박이 파도, 바람 등 외력에 의하여 기울어졌을 때 원래의 평형상태로 되돌아오려는 성질을 말한다.
9. “여객”이라 함은 선박에 승선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가. 선원

나. 1세 미만의 유아

- 다. 세관공무원 등 일시적으로 승선한 자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
10. “여객선”이라 함은 13인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을 말한다.
11. “소형선박”이라 함은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된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인 선박을 말한다.
12. “부선(桴船)”이란 원동기·동력전달장치 등 추진기관이나 돛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해하는 선박을 말한다.
13. “예인선(曳引船)”이라 함은 다른 선박을 끌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을 말한다.
14. “컨테이너”라 함은 선박에 의한 화물의 운송에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기계를 사용한 하역 및積み방식의 적재(積載)가 가능하며, 선박 또는 다른 컨테이너에 고정시키는 장구가 붙어있는 것으로서 밑 부분이 직사각형인 기구를 말한다.
15. “산적화물선(散積貨物船)”이라 함은 곡물·광물 등 건화물(乾貨物)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16. “하역장치”라 함은 화물(해당 선박에서 사용되는 연료·식량·기관·선박용품 및 작업용 자재를 포함한다)을 올리거나 내리는데 사용되는 기계적인 장치로서 선체의 구조 등에 항구적으로 붙어있는 것을 말한다.
17. “하역장구”라 함은 하역장치의 부속품이나 하역장치에 붙여서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
18.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船體傭船)”이란 선체용선 기간 만료 및 총 선체용선료 완불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매선(買船) 조건부 선체용선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4. 15., 2017. 10. 31., 2020. 2. 18.>

1. 군함 및 경찰용 선박
 2. 노, 상앗대, 페달 등을 이용하여 인력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 2의2.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3. 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 외의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 ②외국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선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다만, 제68조는 모든 외국선박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7. 4. 11., 2009. 12. 29., 2017. 10. 31.>
1.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2. 「해운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3.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을 한 선박
-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선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가 이 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협정을 체결한 경우의 해당선박
2. 조난자의 구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의 해당선박
3. 새로운 특징 또는 형태의 선박을 개발할 목적으로 건조한 선박을 임시로 항해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해당선박
4. 외국에 선박매각 등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단 한번의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

제4조(선박시설 기준의 적용) 선박에 설치된 선박시설이나 선박용물건이 이 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선박시설의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기준에 따른 선박시설이나 선박용물건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5조(국제협약과의 관계)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의 감항성 및 인명의 안전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안전기준과 이 법의 규정내용이 다른 때에는 해당국제협약의 효력을 우선한다. 다만, 이 법의 규정내용이 국제협약의 안전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선박의 검사 등에의 참여 등) ①이 법에 따른 선박의 검사 및 검정·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대리인은 선박의 검사 등을 하는 현장에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검사 등에 참여한 자는 검사 및 검정·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 및 검정·확인에 참여할 자가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검사 및 검정·확인에 참여한 자가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 및 검정·확인을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장 선박의 검사

제7조(건조검사) ①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에 설치되는 선박시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건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검사 기록을 기재한 건조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시설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중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 실시하는 검사는 이를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선박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대하여 건조검사에 준하는 검사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이하 “별도 건조검사”라 한다)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별도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제8조(정기검사) ①선박소유자는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선박시설과 만재흘수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무선설비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에 대하여는 「전파법」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항해구역·최대승선인원 및 만재흘수선의 위치를 각각 지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검사기록을 기재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항해구역의 종류와 예외적으로 허용되거나 제한되는 항해구역, 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9조(중간검사) ①선박소유자는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의 사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중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②중간검사의 종류는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하며, 그 시기와 검사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간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검사기록에 그 검사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④해외수역(대한민국의 수역 외의 수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장기간 항해·조업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중간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검사의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제10조(임시검사) ①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임시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2019. 8. 20., 2020. 2. 18.>

1. 선박시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
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선박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선박명 및 선적항의 변경 등 선박시설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무선설비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5.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이하 “해양사고”라 한다) 등으로 선박의 감항성 또는 인명안전의 유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선박시설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6.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시설의 보완 또는 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시검사의 내용 및 시기를 지정한 경우

7. 만재흡수선의 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검사기록에 그 검사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적혀 있는 내용을 일시적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임시변경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7. 10. 31.>

제11조(임시항해검사) ①정기검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 또는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외국선박(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후 외국에서 등록되었거나 외국에서 등록될 예정인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의 건조자는 해당선박에 요구되는 항해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임시항해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검사기록을 기재한 임시항해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제12조(국제협약검사) ①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의 감항성 및 인명안전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국제협약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협약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검사기록을 기재한 국제협약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소유자가 제1항에서 규정된 국제협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증서를 회수하거나 효력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정부로부터 국제협약검사증서의 교부요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외국선박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를 한 후 국제협약검사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의 종류, 국제협약검사증서의 교부·회수·효력정지·취소 및 국제협약 위반에 대한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제13조(도면의 승인 등) ①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조검사·정기검사·중간검사·임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선박의 도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요청을 받은 도면이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이를 승인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2020. 2. 18.>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을 얻은 도면과 동일하게 선박을 건조하거나 개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도면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제14조(검사의 준비 등) ① 건조검사 또는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임시항해검사(이하 “선박검사”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검사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선박의 구조, 시설, 크기, 용도 또는 항해구역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준비, 서류제출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준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로부터 선체두께의 측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외수역에서의 장기간 항해, 조업 또는 외국에서의 수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내에서 선체두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 외의 외국의 두께측정업체로부터 측정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측정장비,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두께측정업체를 제3항에 따른 선체두께 측정 업무를 수행하는 두께측정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31.>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이하 “두께측정지정업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측정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체두께를 측정한 경우
3. 두께측정지정업체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4.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선체두께 측정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두께측정업체를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지정의 취소 또는 측정 업무의 정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31.>

⑦ 두께측정지정업체의 지정절차, 두께측정지정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정의 취소 또는 측정 업무의 정지에 관한 세부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0. 31.>

제15조(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①선박소유자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 선박의 구조배치·기관·설비 등의 변경이나 개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 6., 2019. 8. 20.>

② 선박소유자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 선박이 감항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박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운영되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복원성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선박의 길이·너비·깊이·용도의 변경 또는 설비의 개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2019. 8. 20.>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의 대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 6., 2019. 8. 20.>

제16조(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등) ①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5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③정해진 검사시기까지 중간검사 또는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하지 못하거나 해당 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선박의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검사시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검사에 합격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개정 2017. 10. 31.>

제17조(선박검사증서등이 없는 선박의 항해금지 등) ①누구든지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제10조제3항에 따른 임시변경증,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 및 제43조제2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이하 “선박검사증서등”이라 한다)가 없는 선박이나 선박검사증서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12. 29.>

②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등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한 조건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선박검사증서등을 발급받은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 안에 선박검사증서등(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포함한다)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소형선박의 경우에는 선박검사증서등을 선박 외의 장소에 갖추어 둘 수 있다. <신설 2009. 12. 29., 2022. 12. 27.>

[제목개정 2009. 12. 29.]

제3장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등

- 제18조(형식승인 및 검정)** ①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제9항 전단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는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에 관한 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 ②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생산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담당하는 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 ④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해당변경 부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31.>
- ⑥ 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신설 2017. 10. 31.>
- ⑦ 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31.>
- ⑧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와 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은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선박용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10. 31.>
- ⑨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정에 합격한 해당 선박용물건(이 법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기준으로 「어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 및 검정에 합격한 선박용물건을 포함한다)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는 이를 합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 ⑩해양수산부장관은 검정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검정증서를 교부하고, 해당 선박용물건에는 검정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2020. 2. 18.>

⑪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절차,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절차, 형식승인을 받은 자 및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선박용물건의 보관범위, 검정증서의 서식·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제18조의2(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인 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27.]

제1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2022. 12. 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때
2.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때
- 2의2.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때
3. 제조 또는 수입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아니한 때
5.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제1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도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27.>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2022. 12. 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시험에 관한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3.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4. 형식승인시험의 오차·실수·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 5.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시험의 실시를 거부한 때
- 6.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은 때
- ④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정지,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취소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취소·정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2. 12. 27.>

제19조의2(선박용물건 등의 성능검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해서는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고,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시험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성능검사, 회수·교환·폐기·판매중지, 형식승인 취소 및 그 사실의 공표 등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2. 27.]

제20조(지정사업장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 또는 정비하는 자는 해당사업장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정제조사업장 또는 지정정비사업장(이하 “지정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사업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시설·설비, 제조·정비의 기준, 자체검사기준 및 인력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2020. 2. 18.>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정비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검사기준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는 이를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직접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동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2020. 2. 18.>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검사기준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지정사업장이 직접 합격증서를 발행하고, 해당선박용물건에는 자체검사기준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직접 확인을 받아야 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확인서를 교부하고, 해당 선박용물건에는 확인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사업장을 지정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내용대로 제조·정비 및 운용·관리되고 있는지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절차, 지정사업장의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합격증서·확인서의 서식·교부 및 지정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2020. 2. 18.>

[제목개정 2015. 1. 6.]

제21조(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2020. 2.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때
2. 제조하거나 정비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용물건을 판매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정비하지 아니한 때
5. 해당 사업장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6.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확인을 받은 때
7.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지정사업장으로 지정될 수 없다.<개정 2015. 1. 6.>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제목개정 2015. 1. 6.]

제22조(예비검사) ①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를 제조·개조·수리·정비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용물건이 선박에 설치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예비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예비검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의 도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2항의 규정은 예비검사의 도면에 대한 승인의 표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검사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예비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검사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에 대하여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는 이를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⑤제14조제1항의 규정은 예비검사의 준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 중 “건조검사 및 선박검사”는 “예비검사”로 본다.

제4장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등

제23조(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① 선박에 실리어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의 경우 그 바닥의 면적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컨테이너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형식에 관한 승인(이하 “컨테이너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시험기관(이하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의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컨테이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해당 변경 부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별도의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및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컨테이너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이하 “컨테이너검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검정에 합격

한 컨테이너에 대하여는 컨테이너검정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⑧ 컨테이너의 제조자는 제7항에 따라 컨테이너검정에 합격한 컨테이너에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안전승인판(이하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이라 한다)을 붙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컨테이너안전승인판에 컨테이너검정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⑨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을 제거하여야 한다.

1. 컨테이너가 원래의 승인사항 및 컨테이너안전승인판에 있는 정보와 다르게 개조된 경우
2.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
3. 제24조에 따른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및 그 변경승인의 절차, 컨테이너 지정시험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형식승인시험의 기준,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절차,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 및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⑪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제8항에 따른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을 붙이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실어 화물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22. 12. 27.]

[시행일: 2022.12.27] 제23조제9항

제23조의2(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인 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27.]

제23조의3(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때
2. 컨테이너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검정을 받은 때

3. 컨테이너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후 2년 이상 계속하여 컨테이너를 제조하지 아니한 때
5. 제23조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컨테이너가 제23조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에 따른 보고·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때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형식승인시험에 관한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3.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형식승인시험의 오차·실수·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시험의 실시를 거부한 때
 6.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은 때
- ③ 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제23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도 취소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정지, 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취소·정지 및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2. 27.]

- 제23조의4(컨테이너의 성능검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형식승인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아 제조·수입되는 컨테이너 및 사용되고 있는 컨테이너를 수집하여 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고, 컨테이너형식승인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제23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성능검사, 회수·교환·폐기·판매중지, 컨테이너형식승인 취소 및 그 사실의 공표 등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2. 27.]

제24조(컨테이너의 안전점검) ①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자체 안전점검 방법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제 24조의2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2. 12. 2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소유자가 승인받은 안전점검방법을 승인일부터 매 10년마다 재검토하여 그 유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7.>

③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안전점검방법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2. 27.>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방법·승인절차,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방법의 재검토 기준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2. 27.>

제24조의2(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등) ①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대행하는 자 또는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외국 컨테이너 소유자에 대해 국내항만에서 컨테이너 안전점검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라 한다)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컨테이너 안전점검기준 및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변경등록 절차 및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2. 27.]

제24조의3(안전점검방법의 승인·변경승인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 소유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27.]

제24조의4(등록취소 및 정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4.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안전점검사업 수행 실적이 없는 경우
6. 안전점검사업자가 사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에 안전점검사업을 계속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2. 27.]

제25조(컨테이너의 사용금지 등) ①누구든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실어 해상화물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18.>

②누구든지 파손·부식 또는 균열이나 유해한 변형 등으로 인하여 인명과 선박의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컨테이너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 내 반입되는 컨테이너에 대하여 유효한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의 부착, 컨테이너의 구조 등이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7.>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를 발견하거나 또는 신고를 받은 때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부적합한 컨테이너가 식별된 때에는 해당컨테이너를 개방하고 이를 수리하거나, 컨테이너에 실린 화물의 이적(移積) 또는 폐기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2022. 12. 27.>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컨테이너의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2. 12. 27.>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컨테이너의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소재를 모르는 경우 해당컨테이너 및 실린 화물을 공매하여 제4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2022. 12. 27.>

⑦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에 필요한 조치, 비용의 청구절차 및 충당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2022. 12. 27.>

제25조의2(전산망의 구축·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컨테이너형 식승인 및 변경승인,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및 변경승인, 제2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에 관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7.]

제5장 선박시설의 기준 등

제26조(선박시설의 기준) 선박시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7조(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잠수선 및 그 밖
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선박의 길이(이하 “선박길이”라 한다)가 12미터 이상인 선박
 3. 선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선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가. 여객선
나.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
-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복원성의 유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해당 선박에 대한 정당한 권원(權原)을 가지고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복원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인·해양사고구조·준설 또는 측량에 사용되는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1. 여객선
 2. 선박길이가 12미터 이상인 선박
-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선박의 복원성과 관련하여 그 적합 여부에 대하여 복원성자료를 제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복원성자료를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 ③제2항에 따른 승인의 경우 복원성 계산을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용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복원성 계산방식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원성과 관련된 승인의 기준·절차, 복원성자료 및 복원성 계산용 컴퓨터프로그램의 작성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9조(무선설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무선설비는 「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

2. 제1호의 선박 외에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선박 외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무선설비는 「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임시항해검사증서를 가지고 1회의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시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선박위치발신장치) ①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박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이하 “선박위치발신장치”라 한다)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②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무선설비가 선박위치발신장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③선박의 선장은 해적 또는 해상강도의 출몰 등으로 인하여 선박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작동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장은 그 상황을 항해일지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장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제31조(선장의 권한) 누구든지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항해용 간행물의 비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도(海圖) 및 조석표(潮汐表) 등 항해용 간행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제33조(조타실의 시야확보 등) ①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의 조타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②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의 조타실과 조타기(操舵機)가 설치된 장소 사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통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제34조(하역설비의 확인 등) ① 하역장치 및 하역장구(이하 “하역설비”라 한다)를 갖춘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하중·제한각도 및 제한반지름(이하 “제한하중등”이라 한다)의 사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한하중등의 확인을 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제한하중등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을 받은 선박소유자는 해당하역설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받은 제한하중등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을 받은 선박소유자는 확인받은 제한하중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하역설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하역설비검사기록 및 비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하역설비에 대하여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설비검사기록부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역설비검사기록부 등 하역설비에 대한 검사와 관련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제36조(화물정보의 제공) ① 화주(貨主)는 화물을 안전하게 싣고 운송하기 위하여 화물을 싣기 전에 그 화물에 관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② 컨테이너에 실은 화물을 외국으로 운송하려는 화주는 제1항에 따라 화물에 관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화물의 총중량에 관한 검증된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장이 화주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선장 외에 「항만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에게도 화물의 총중량에 관한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9., 2020. 2. 18.>

③ 선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화물의 적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화물의 종류 및 그 화물별로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내용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 10. 31.]

제37조(유독성가스농도 측정기의 제공 등) 선박소유자는 유독성가스를 발생하거나 또는 산소의 결핍을 일으킬 수 있는 화물을 산적(散積)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 유독성가스 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機器) 및 그 사용설명서를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38조(소독약품 사용에 따른 안전조치) 선장은 선박의 소독을 위하여 살충제 등 소독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39조(화물의 적재·고박방법 등) ①선박소유자는 화물을 선박에 적재(積載)하거나 고박(固縛)하기 전에 화물의 적재·고박의 방법을 정한 자체의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마련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②선박소유자는 화물과 화물유니트(차량 및 이동식탱크 등과 같이 선박에 붙어있지 아니하는 운송용 기구를 말한다) 및 화물유니트 안에 실린 화물을 적재 또는 고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0. 2. 18.>

③선박소유자는 차량 등 운반선박(육상교통에 이용되는 차량 등을 실어 운송할 수 있는 갑판이 설치되어 있는 선박을 말한다)에 차량 및 화물 등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에 따르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④선박소유자는 컨테이너에 화물을 수납·적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에 따르되, 컨테이너안전승인판에 표시된 최대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수납·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2. 12. 27.>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물의 적재·고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제40조(산적화물의 운송) ①선박소유자는 산적화물을 운송하기 전에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선박의 복원성·화물의 성질 및 적재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②산적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복원성·화물의 성질 및 적재방법의 내용, 안전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1조(위험물의 운송) ①선박으로 위험물을 적재·운송하거나 저장하고자 하는 자는 항해상의 위험방지 및 인명안전에 적합한 방법에 따라 적재·운송 및 저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을 적재·운송하거나 저장하고자 하는 자는 그 방법의 적합 여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종류와 그 용기·포장, 적재·운송 및 저장의 방법, 검사 또는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사성물질을 운송하는 선박과 액체의 위험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의 시설기준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 제41조의2(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등)** ① 선박으로 운송하는 위험물을 제조·운송·적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위험물취급자”라 한다)는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기관(이하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③ 제2항에 따라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시설·설비 및 인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해당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이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⑤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⑥ 제1항에 따른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위험물취급자의 구체적인 범위, 교육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 [본조신설 2010. 4. 15.]

- 제42조(유조선 등에 대한 강화검사)** ① 유조선·산적화물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액화가스산적운송선은 제외한다)의 선박소유자는 건조검사 및 선박검사 외에 선체구조를 구성하는 재료의 두께확인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강화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항해를 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강화검사에 합격한 유조선 등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그 검사결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화검사의 방법과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제43조(예인선에 대한 예인선항해검사)** ① 예인선의 선박소유자가 부선 및 구조물 등을 예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예인선항해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인선항해검사에 합격한 예인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예인선항해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 ③ 예인선의 선박소유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를 해당 예인선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④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은 예인선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는 “예인선항해검사”로 본다.<개정 2019. 8. 20.>

제44조(고인화성 연료유 등의 사용제한) 누구든지 선박에서는 화재·폭발 방지시설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는 인화점이 섭씨 60도 미만인 연료유·유탄유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제7장 삭제 <2018. 12. 31.>

제45조 삭제 <2018. 12. 31.>

제46조 삭제 <2018. 12. 31.>

제47조 삭제 <2009. 2. 6.>

제48조 삭제 <2018. 12. 31.>

제49조 삭제 <2009. 2. 6.>

제50조 삭제 <2018. 12. 31.>

제51조 삭제 <2009. 2. 6.>

제52조 삭제 <2009. 2. 6.>

제53조 삭제 <2009. 2. 6.>

제54조 삭제 <2018. 12. 31.>

제55조 삭제 <2018. 12. 31.>

제56조 삭제 <2018. 12. 31.>

제57조 삭제 <2009. 2. 6.>

제58조 삭제 <2018. 12. 31.>

제58조의2 삭제 <2018. 12. 31.>

제58조의3 삭제 <2018. 12. 31.>

제59조 삭제 <2018. 12. 31.>

제8장 검사업무의 대행 등

제60조(검사등업무의 대행)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조검사·선박검사 및 도면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이하 “검사등업무”라 한다)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2018. 12. 31., 2020. 2. 18.>

1.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건조검사, 건조검사증서의 교부 및 별도건조검사
2.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및 선박검사증서의 교부
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간검사
4.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검사 및 임시변경증의 발급
5.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항해검사 및 임시항해검사증서의 교부
6. 제12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 및 국제협약증서의 교부
7.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면의 승인 및 승인표시
8. 삭제 <2017. 10. 31.>
9.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10. 제18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 검정증서의 교부 및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
11. 제2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 확인서의 교부 및 확인을 나타내는 표시
12.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비검사, 도면의 승인 및 승인표시, 예비검사증서의 교부 및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
13.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원성자료의 승인
14.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한하중등의 확인 및 제한하중등확인서의 교부
15.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역설비검사기록부의 작성 및 내용기재
16.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승인
17.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화검사
18.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 및 예인선항해검사증서의 교부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보험의 가입·유지를 위하여 선박의 등록 및 감항성에 관한 평가의 업무[이하 “선급업무(船級業務)”라 한다]를 하는 국내외 법인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에 해당선급법인이 관리하는 명부에 등록하였거나 등록하려는 선박(이하 “선급등록선박”이라 한다)에 한정하여 제1항 각 호의 검사등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③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협정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단 및 선급법인이 검사등업무의 대행을 하는 때에는 대행과 관련된 자체검사규정을 제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제61조(대행업무의 차질에 따른 조치)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및 선급법인이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등업무를 대행할 때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이를 수행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제62조(대행업무에 관한 감독)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및 선급법인이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협정에 위반한 때에는 해당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의 취소나 정지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등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공단 및 선급법인의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0. 31.>

제63조 삭제 <2017. 10. 31.>

제64조(컨테이너검정 등의 대행)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행기관(이하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2. 12. 27.>

1. 제23조제7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
2. 제23조제8항에 따른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의 확인표시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대행 및 대행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65조(위험물 관련 검사·승인의 대행)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운송 및 저장 등에 관한 검사 및 승인에 대한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행기관(이하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대행 및 대행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66조(외국정부등이 행한 검사의 인정) ①외국선박의 해당 소속국가에서 시행 중인 선박안전과 관련되는 법령의 내용이 국제협약 또는 이 법의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외국정부 또는 그 외국정부가 지정한 대행기관(이하 “외국정부등”이라 한다)이 행한 해당외국선박에 대한 검사등업무는 이 법에 따른 검사등업무로 본다. <개정 2017. 10. 3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정부등이 검사등업무를 행하고 교부한 증서는 이 법에 따라 교부한 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에 따라 교부한 증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외국정부등이 발행한 증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대행검사기관의 배상책임) ①국가는 공단, 선급법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및 위험물 검사등대행기관(이하 “대행검사기관”이라 한다)이 해당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에서 대행검사기관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대행검사기관에 구상할 수 있다.<개정 2020. 2. 18.>

③제2항에 따른 대행검사기관에 대한 구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대행검사기관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구상금액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10. 31.>

제9장 항만국통제

제68조(항만국통제)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선박의 구조·설비·화물운송방법 및 선원의 선박운항지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이하 “항만국통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항만국통제를 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항만에 입항하거나 입항예정인 외국선박에 직접 승선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의 항해가 부당하게 지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국통제의 결과 외국선박의 구조·설비·화물운송방법 및 선원의 선박운항지식 등이 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의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선박에 대하여 수리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국통제 결과 선박의 구조·설비·화물운송방법 및 선원의 선박운항지식 등과 관련된 결함으로 인하여 해당 선박 및 승선자에게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⑤외국선박의 소유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해당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불복사유를 기재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의 위법·부당 여부를 직접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⑦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2. 18.>

⑧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한 조치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2. 18.>

제69조(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①선박소유자는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에 의하여 선박의 결함이 지적되지 아니하도록 관련되는 국제협약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에 의하여 출항정지 처분을 받은 대한민국 선박이 국내에 입항할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선박의 구조·설비 등에 대하여 점검(이하 “특별점검”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특별점검을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대한민국 선박에 대하여 외국항만에 출항정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선박의 구조·설비 등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1. 선령이 15년을 초과하는 산적화물선·위험물운반선
2.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점검의 결과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시정·보완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제70조(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인하여 출항정지명령을 받은 대한민국 선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의 선박명·총톤수, 출항정지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제10장 특별검사 등

- 제71조(특별검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구조·설비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유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선박의 구조·설비 등에 대하여 검사(이하 “특별검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 선박의 범위, 선박소유자의 준비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30일전에 공고하고, 해당선박소유자에게 직접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검사의 결과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시정·보완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 ④제15조제1항·제2항 및 제16조제3항은 제1항에 따라 특별검사를 받은 선박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제2항 중 “선박검사” 및 제16조제3항 중 “중간검사 또는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시검사”는 각각 “특별검사”로 본다. <개정 2017. 10. 31., 2019. 8. 20.>

- 제72조(재검사 등)** ①제60조제1항·제2항(제6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자가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라 대행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검정 및 확인을 받은 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때에는 그 결과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사·재검정 및 재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2020. 2. 18.>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검사·재검정 및 재확인의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재검사 등을 직접 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③대행검사기관의 검사·검정 및 확인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검사·재검정 및 재확인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18.>

제11장 보칙

- 제73조(선급법인의 선박검사)** 선급등록선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시설 및 만재흘수선에 한정하여 이 법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제74조(결함신고에 따른 확인 등) ①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2020. 2. 18.>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 결과 결함의 내용이 중대하여 해당선박을 항해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해당 선박 및 승선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결함이 시정될 때까지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④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5조(보고·자료제출명령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두께측정지정업체, 제1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은 자, 제23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 제24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소유자,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제36조제2항에 따른 화주, 선장, 「항만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 공단, 선급법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2017. 10. 31., 2020. 1. 29., 2022. 12. 27.>

1. 제14조제7항, 제18조제11항, 제20조제5항, 제23조제10항, 제24조의2제5항, 제64조제2항 및 제65조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1의2. 제23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의3. 제24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 승인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의4.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등록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선박의 감항성과 인명안전을 위한 시설 및 항해상의 위험방지 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3.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내용 및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1항 각 호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해당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및 시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자, 조사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선박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의 항해일정 등에 따라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보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인하여 제

1항 각 호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해당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 또는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선박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수리·보완과 관련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지는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⑦ 대항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마다 해당 기관의 대항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31.>

제76조(선박검사관)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박검사관으로 임명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2022. 12. 27.>

1. 건조검사,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임시항해검사, 국제협약검사,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 적재방법의 적합 여부에 대한 검사, 강화검사, 예인선항해검사, 특별점검, 특별검사 및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검사·재검정·재확인에 관한 업무
2. 제18조제9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 제23조제7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 및 제25조제3항에 따른 확인에 관한 업무
3.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대항업무의 차질에 따른 직접 수행에 관한 업무
4.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항만국통제에 관한 업무
5.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함신고 사실의 확인에 관한 업무
6.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 또는 사업장의 출입·조사에 관한 업무

제76조의2(선박검사관의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퇴직 직전 5년 이내 기간 중 선박검사관으로 근무했던 경력을 보유한 공무원은 퇴직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선박검사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 2. 18.>

[본조신설 2015. 1. 6.]

제77조(선박검사원) ①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항업무를 행하는 공단 및 선급법인은 해당대항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로서 선박검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의 자격기준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12. 29., 2013. 3. 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검사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대하여 그 해임을 요청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무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09. 12. 29., 2013. 3. 23., 2020. 2. 18.>

④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제3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선박검사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09. 12. 29., 2013. 3. 23., 2020. 2. 18.>

- 제77조의2(위험물검사원)** ① 제65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무를 행하는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은 해당 대행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로서 위험물검사원을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험물검사원의 자격기준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험물검사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에 대하여 그 해임을 요청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무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④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위험물검사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8. 20.]

- 제78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2022. 12. 27.>
1. 제14조제5항에 따른 두꺼측정지정업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2. 제19조제1항 또는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취소 또는 효력정지
 3. 제19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효력정지
 4.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또는 효력정지
 5.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취소 또는 효력정지
 - 5의2.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의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및 형식승인 취소
 - 5의3. 제24조의3에 따른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방법 승인 취소 및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취소 또는 사업 정지
 6. 제41조의2제4항에 따른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7. 제62조제1항에 따른 공단 및 선급법인의 대행의 취소 또는 정지
 8. 제64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대행의 취소 또는 정지
 9. 제65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대행의 취소 또는 정지
 10. 제77조제3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에 대한 해임 또는 직무정지 요청
 11. 제77조의2제3항에 따른 위험물검사원에 대한 해임 또는 직무정지 요청

[전문개정 2017. 10. 31.]

제79조(조사 및 연구)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감항성 및 인명안전의 확보와 선박안전과 관련한 국제협약에 관한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80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항검사기관이 이 법에 따른 검사·확인·검정 및 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대항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2017. 10. 31., 2019. 8. 20., 2022. 12. 27.>

1. 건조검사, 선박검사, 별도건조검사 또는 국제협약검사를 신청하는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면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3.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4.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5. 제18조제9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
6.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7. 제2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확인을 신청하는 자
8.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검사를 신청하는 자
9.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면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10.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11. 제23조제7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을 신청하는 자
1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방법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13.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복원성자료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14.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한하중등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15.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16.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자
17. 강화검사 또는 예인선항해검사를 신청하는 자
18.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제4항, 제18조제10항, 제20조제4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7항 후단, 제34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에 따른 증서 등의 교부 또는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② 삭제 <2017. 10. 31.>

③대항검사기관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④대항검사기관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수입은 대항검사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7. 10. 31.>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항만국통제 결과 결함이 발견되어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을 받은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함의 시정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⑥제6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서 특별점검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항공료 등 필요한 설비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8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10. 31.]

제8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0조제1항·제2항, 제64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 2. 18.>

제12장 벌칙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6., 2017. 10. 31., 2019. 8. 20., 2020. 2. 18., 2022. 12. 27.>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조검사·선박검사 또는 국제협약검사를 받은 자
-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3항에 따른 선체두께의 측정을 한 자
3. 제15조제1항(제4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 선박의 구조배치·기관·설비 등을 변경하거나 개조한 선박소유자
- 3의2. 제15조제2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여 선박을 해양사고에 이르게 한 선박소유자
4.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의 길이·너비·깊이·용도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개조한 선박소유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제4항·제9항에 따른 형식승인, 그 변경승인 및 검정을 받거나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지 않은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
- 6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4항에 따른 합격증서를 발행하거나 또는 자체검사기준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은 자

-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제3항·제7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그 변경승인 및 검정을 받거나 컨테이너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지 않은 자
-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및 변경승인을 받은 자
- 8의3. 제24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컨테이너를 사용한 자
- 8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등록한 자
- 8의5.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한 자
- 9.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한 자
- 10.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복원성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 11.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승인받지 아니하고 화물을 적재 또는 고박한 자
- 11의2.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은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고 화물을 적재 또는 고박한 자
-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화검사를 받은 자
- 1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은 자
- 13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제1항에 따른 검사등업무를 한 자
- 13의3. 삭제<2017. 10. 31.>
- 13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4조에 따른 컨테이너의 검정 등을 한 자
- 13의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5조에 따른 위험물 관련 검사·승인을 한 자
- 14. 제7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제84조(벌칙) ①선박소유자, 선장, 선박직원 및 컨테이너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2. 29., 2013. 3. 23., 2015. 1. 6., 2017. 10. 31., 2020. 2. 18., 2022. 12. 27.>

- 1.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항해구역을 넘어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
- 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
- 3.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만재흘수선의 지정된 위치를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
- 4. 삭제<2015. 1. 6.>
- 5.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검사증서등이 없거나 선박검사증서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

- 6.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검사증서등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한 조건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
- 6의2. 제23조제11항을 위반하여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이 붙어있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실어 화물운송에 사용한 때
- 6의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 6의4.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컨테이너를 사용한 때
- 7. 삭제 <2009. 12. 29.>
- 8.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은폐·변경 또는 말소한 때
- 9. 삭제 <2015. 1. 6.>
- 10.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
- 11. 제74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결함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②선장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선장을 벌하는 외에 선박소유자에게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선박소유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2. 29.>
- ③ 선장 외에 선박승무원이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선박승무원을 벌하는 외에 그 선장에게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선장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2. 29.>
- ④ 삭제 <2020. 2. 18.>

제8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2. 6., 2015. 1. 6., 2020. 2. 18., 2022. 12. 27.>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처분을 따르지 아니한 자
- 1의2. 삭제 <2018. 12. 31.>
- 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운송 또는 저장방법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
- 2.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3.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4. 삭제 <2015. 1. 6.>
- 5.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항정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6. 제7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의 보고를 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8.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6., 2022. 12. 27.>

1. 삭제 <2015. 1. 6.>

1의2.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1의3.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1의4.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컨테이너안전승인판에 표시된 최대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수납·적재한 자

2. 제4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부선 및 구조물 등을 예인한 자

3.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인화성 연료유·유탄유 등을 선박에서 사용한 자

제86조의2(양벌규정) 선박소유자의 대리인(선박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선박승무원은 제외한다)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각 호 또는 제8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하면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그 선박소유자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선박소유자가 그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0. 2. 18.]

제87조(벌칙 적용의 예외)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선박소유자에게 적용할 벌칙은 선박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8조(벌칙의 적용)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이 법 중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공유의 경우에 선박관리인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이를 선박관리인에게, 선박임대차의 경우에는 이를 선박차용인에게, 용선(傭船)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선박의 관리·운항을 담당하는 자에게 각각 적용하고, 선장에 관한 규정은 선장을 대신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자에게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20. 2. 18.>

제89조(과태료) ① 삭제 <2015. 1. 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2. 6., 2009. 12. 29., 2010. 4. 15., 2013. 5. 22., 2015. 1. 6., 2017. 10. 31., 2020. 2. 18., 2022. 12. 27.>

1.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된 도면을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5. 1. 6.>

3의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검사증서등을 선박(소형선박은 제외한다)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 3의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8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 또는 변경승인시험에 합격한 선박용물건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 4의2. 제24조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 4의3.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한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5. 삭제 <2015. 1. 6.>
6. 삭제 <2015. 1. 6.>
7.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복원성자료를 선장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8.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한 자
9.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항해용 간행물을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10.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타실의 시야를 확보하지 아니한 자
11. 제3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타실과 조타기가 설치된 장소 사이에 통신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12. 제3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하중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하중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하역시설을 사용한 자
14. 제3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역설비검사기록부 등의 서류를 선내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15.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화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16.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독성가스 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 및 이에 관한 사용설명서를 선장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17.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18. 삭제 <2015. 1. 6.>
19. 제3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20. 삭제 <2015. 1. 6.>
21.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의 복원성·화물의 성질 및 적재방법에 관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22. 제4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23.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을 적재·운송 또는 저장한 자
2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운송 또는 저장방법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 2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취급한 자
25.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화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6. 제4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인선항해검사증서를 예인선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26의2. 삭제<2018. 12. 31.>

27. 제6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인하여 출항정지된 대한
민국 선박의 소유자

28.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선박소유자

나.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다. 제23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

라.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안전점검사업자

③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선박의
선장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9. 12. 29., 2020. 2. 18.>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08. 2. 29., 2009. 12. 29., 2013. 3. 23.>

⑤ 삭제<2009. 2. 6.>

⑥ 삭제<2009. 2. 6.>

부칙 <제8221호, 2007. 1. 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장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추가적용선박에 대한 적용례 등) ①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
니한 선박, 총톤수 5톤 미만의 범선 및 부유식해상구조물(이하 이 조에서 “추가적용선박” 이
라 한다)은 2008년 10월 1일 이후 건조되는 선박부터 이를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 10월 1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된 추가적용선
박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

1. 길이 7미터 이상 : 2009년 4월 1일

2. 길이 6미터 이상 7미터 미만 : 2010년 4월 1일

3. 길이 6미터 미만 : 2011년 4월 1일

③제2항의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추가적용선박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조검사는
이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조타실의 시야확보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조계약
을 체결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4조 (하역설비의 검사대상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하역장치 및 하
역장구에 대한 제한하중 등의 지정이 면제되었던 선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기검사 또는
제1종 중간검사를 받는 분부터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유독성가스농도 측정기의 제공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 및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기검사 또는 제1종 중간검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삭제 <2009. 12. 29.>

제8조 (건조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설계도서에 대한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도면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선박검사 및 국제항해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우수사업장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우수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컨테이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선박의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는 제23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선박에 한하여 적재할 수 있다.

제10조 (만재흡수선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만재흡수선 표시가 면제된 선박은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선박의 길이·너비·깊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복원성의 유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복원성의 유지를 하는 것이 면제된 선박은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해당선박의 길이·너비·깊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선장에게 제공한 복원성자료는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공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하역설비의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하역장치 및 하역장구에 대한 제한하중 등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하역설비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 (공단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기술협회는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선박검사기술협회의 이사장·이사 및 감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기가 끝날 때까지 각각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공단의 이사장·이사 및 감사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선박검사기술협회가 행한 행위 또는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선박안전기술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선박검사기술협회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이 이를 포괄하여 승계한다. 이 경우 공단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 가액으로 한다.

⑤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및 그 밖의 공부상의 선박검사기술협회의 명의를 선박안전기술공단의 명의로 본다.

⑥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선박검사기술협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검사등업무의 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단 및 선급 법인이 대행하고 있는 검사등업무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1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선박안전법」 제4조”를 “「선박안전법」 제29조”로 한다.

②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2호중 “「선박안전법」 제6조의3”을 “「선박안전법」 제18조”로 한다.

③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검사협회"라 한다)”를 “「선박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동법 제8조”를 “동법 제60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항제1호중 “검사협회”를 각각 “공단”으로 한다.

④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중 “「선박안전법」 제5조”를 각각 “「선박안전법」 제8조 내지 제11조”로 한다.

⑤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중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검사협회"라 한다)”를 “「선박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동법 제8조제2항”을 “동법 제60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중 “검사협회”를 각각 “공단”으로 한다.

⑥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4610호 유선및도선사업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중 “선박안전법 제2조제2항제3호”를 “「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⑦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2호중 “「선박안전법」 제4조”를 “「선박안전법」 제29조”로 한다.

⑧해양오염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선박안전법」 제5조제1항”을 “「선박안전법」 제8조 내지 제11조”로 한다.

제67조중 “ 기술요원과 「선박안전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선박해철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을 채용한 자는 ” 을 “ 기술요원은 ” 으로 한다.

부칙 <제8381호, 2007. 4. 11.> (해운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법률 제8221호 선박안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 「해운법」 제25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 ” 을 “ 「해운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 ” 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 、 <생략> 、 、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44> 까지 생략

<645>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9호다목, 제3조제3항제2호,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전단,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3항,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5항, 제1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제4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2항, 제18조제2항 단서 및 제8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전단 및 제6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 제23조제1항 및 제7항, 제24조제2항 및 제3항, 제25조제6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9조제2항 전단, 제30조제1항, 제32조,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제36조제2항, 제39조제1항、제3항 및 제5항, 제40조제3항, 제41조제3항, 제42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3항,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제60조제3항, 제6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69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4항, 제71조제1항, 제73조,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제5항 중 “ 해양수산부령 ” 을 각각 “ 국토해양부령 ” 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전단,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제3항,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제7항·제8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및 제5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 제23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제1항 전단,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항 전단,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0조제1항,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제35조제1항,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항, 제41조제2항 및 제4항, 제4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제44조, 제45조제1항, 제47조제2항 전단, 제48조제2항 및 제3항 본문·단서, 제52조제2항, 제57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58조제1항 및 제2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및 제4항, 제61조, 제62조제1항, 제63조제1항 본문,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 제68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항 본문, 제69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70조, 제7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2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5항,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2항 및 제3항, 제78조, 제79조,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5항·제6항, 제81조제1항 및 제2항, 제84조제1항제4호 및 제8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하에 두는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장 소속하에 두는 해양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64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446호, 2009. 2. 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71호, 2009. 12. 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과 법률 제8221호 선박안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271호, 2010. 4. 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사 중인 위험물취급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4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8>까지 생략

<599>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2호, 같은 조 제9호다목, 제3조제3항제2호, 제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9조제1항·제2항·제4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2항·제5항,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2항,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3조제1항·제7항, 제24조제2항·제3항, 제25조제6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9조제2항 전단, 제30조제1항, 제32조,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제2항, 제39조제1항·제3항·제5항, 제40조제3항, 제41조제3항, 제41조의2제3항·제5항, 제42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60조제3항, 제6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69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71조제1항, 제73조,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2항, 제78조 및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4조제2항·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제8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

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제1항 전단,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0조제1항,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제1항,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항, 제41조제2항·제4항, 제41조의2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4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4조, 제45조제1항,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61조, 제62조제1항, 제63조제1항 본문,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 제6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69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0조, 제7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3항·제4항, 제78조, 제79조,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81조제1항, 제84조제1항제4호 및 제89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0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808호, 2013. 5.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999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사업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우수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002호, 2015. 1. 6.> (해운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③ 생략

부칙 <제15002호, 2017. 10.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행검사기관에 대한 구상금액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대행검사기관이 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형식승인증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얻은 후 종전의 제18조제8항에 따라 발급된 형식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 당시 형식승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 이하인 경우: 형식승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5년

2. 이 법 시행 당시 형식승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같은 항 후단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을 거쳐 변경승인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얻은 후 종전의 제18조제8항에 따라 발급된 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서는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형식승인증서로 본다. 이 경우 그 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 당시 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 이하인 경우: 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5년

2. 이 법 시행 당시 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제4조(선박의 복원성 유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항하여 항해 중인 선박에 대해서는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두께측정대행업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3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두께측정대행업체는 제1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시된 두께측정지정업체로 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160호,2018. 12. 3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앞의 “ 제7장 선박안전기술공단 ” 을 삭제한다.

제45조, 제46조, 제48조, 제50조,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 제58조의3 및 제5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 공단 ” 을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 으로 한다.

제85조제1호의2 및 제89조제2항제26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6506호,2019. 8. 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02호,2020. 1. 29.> (항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후단 및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항만법」 제30조제1항 ” 을 각각 “ 「항만법」 제41조제1항 ” 으로 한다.

2& 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7028호,2020. 2.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제4항 및 제8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34호,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 및 제23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와 종전의 제23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 발급된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이하 “형식승인증서등”이라 한다)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 당시 형식승인증서등을 발급받은 날부터 3년 이하인 경우: 형식승인증서등을 발급받은 날부터 5년
2. 이 법 시행 당시 형식승인증서등을 발급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제5항에 따라 컨테이너검정에 합격하여 컨테이너에 부착된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은 제23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컨테이너안전승인판”으로 본다.

제3조(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방법 재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방법에 대한 재검토 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을 승인받고 10년이 경과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 승인일자 전까지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을 승인받고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승인일부터 10년이 도래하는 승인일자 전까지

제4조(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종전의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안전점검사업자 또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외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업무를 대행하고 있던 안전점검사업자가 컨테이너 소유자와의 계약사항,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설·인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고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내에 등록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사업자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사업자는 등록 후 1년 내에 이 법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선박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4. 11. 12.] [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51 - 773 - 5833, 5831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제외 선박) ①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7. 6., 2018. 9. 4., 2020. 7. 28., 2021. 1. 5., 2023. 4. 11., 2023. 6. 7.>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이하 “선박검사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자가 일정 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그 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한 후 해당 선박을 계류(이하 “계선”이라 한다)한 경우 그 선박
2.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
3. 2007년 11월 4일 전에 건조된 선박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이 경우 외국에서 수입된 선박은 2007년 11월 4일 전에 「선박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선박으로 한다.

가. 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않은 선박으로서 평수(平水)구역[호소(湖沼: 호수와 늪)、하천 및 항내의 수역(「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이 지정된 항만의 경우 항만구역과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이 지정된 어항의 경우 어항구역을 말한다)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 1) 「항만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작업선(이하 “항만건설작업선”이라 한다)
- 2) 압항부선(押航艇: 추진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선박에 결합되어 운항하는 부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 3)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 4) 잠수선 등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

나. 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않은 선박으로서 연해구역(영해기점으로부터 20해리 이내의 수역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운항하는 선박.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 1) 항만건설작업선
- 2) 압항부선

3)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4) 잠수선 등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

다. 삭제 <2015. 7. 6.>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의 계선기간 및 계선사유 등을 기재한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제1항제3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호 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등은 해당 선박에 대하여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7. 6., 2018. 9. 4., 2023. 4. 11.>

제3조(외국선박에 대한 법의 적용범위)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외국선박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은 법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법 제18조제9항, 법 제20조제3항, 법 제22조, 법 제26조부터 제44조까지, 법 제60조제1항·제2항, 법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 법 제80조, 법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 법 제88조 및 법 제89조로 한다. <개정 2010. 11. 24., 2018. 4. 30.>

제4조(협정체결에 따른 적용배제 등)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조제3항제1호의 선박 : 해당 선박에 대하여 적용되는 협정의 내용에 따른다.
2. 법 제3조제3항제2호의 선박 : 법 제1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법 제3조제3항제3호의 선박 :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법 제3조제3항제4호의 선박 : 법 제2조제2호의 선박시설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조의2(선체 두께측정업체의 지정기준) 법 제14조제4항에서 “측정장비,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선체두께측정업체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 4. 30.]

제5조(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선박에 대하여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임시변경증 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은 해당 임시변경증 또는 임시항해검사증서에 기

재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1. 여객선안전검사증서·원자력여객선안전검사증서 및 원자력화물선안전검사증서 : 1년

2. 그 밖의 국제협약검사증서 : 5년

③ 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7. 6.>

1. 최초로 법 제8조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은 경우 해당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

2.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종전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3.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이 되는 날 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

4.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종전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다만, 계선(제2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종전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기검사를 받고 해당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의 기산 방법은 제3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기산 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검사증서”는 “국제협약검사증서”로 본다.

제6조(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 내에 해당 선박이 정기검사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협약검사를 받을 장소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그 정기검사 또는 국제협약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7. 6.>

1. 해당 선박이 정기검사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협약검사를 받기 곤란한 장소에 있는 경우 : 3개월 이내

2. 해당 선박이 외국에서 정기검사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협약검사를 받았으나 선박검사증서 또는 국제협약검사증서를 선박에 갖추어 둘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5개월 이내

3. 해당 선박이 짧은 거리의 항해(항해를 시작하는 항구부터 최종 목적지의 항구까지의 항해거리 또는 항해를 시작한 항구로 회항할 때까지의 항해거리가 1천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항해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경우(국제협약검사증서로 한정 한다) : 1개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협약검사증서 중 국제방사능핵연료화물운송적합증서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유효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의 신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7조(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식승인 대상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한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이하 “형식승인시험”이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있을 것
2. 형식승인시험대상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직접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제조자에게 해당 제품을 납품하는 자가 아닐 것
3. 형식승인시험의 특정 시험항목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에 해당할 것
4. 해당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국가표준기본법」 또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정·교정을 받은 기기를 포함한다)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일부를 임차하거나 그 형식승인시험을 다른 사람에게 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시험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8조 삭제 <2010. 11. 24.>

제9조 삭제 <2010. 11. 24.>

제10조(검사등업무의 대행 등) ①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후단에 따라 검사등업무의 대행에 대하여 협정을 체결하려는 공단 또는 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협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정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4. 30.>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검사등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 공단 또는 선급법인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정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체결하는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표 1의2와 같다.<개정 2018. 4. 30.>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정을 체결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1조(대행업무의 취소 등)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공단 및 선급법인이 별표 1의2에 따른 협정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8. 4. 30.>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2조 삭제 <2018. 4. 30.>

제13조(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취소 등)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 등을 한 경우
3. 대행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4.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검정 등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4조(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취소 등) ①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 또는 승인을 한 경우
3. 대행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4.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검사 및 승인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5조(대행검사기관에 대한 구상) 법 제67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 4. 30.>

1. 공단 : 3억원
2. 선급법인 : 50억원
3.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 3억원
4.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 : 3억원

제16조(항만국통제의 시행) ①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이란 다음 각 호의 협약을 말한다. <개정 2018. 4. 30.>

1.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2. 「만재흡수선에 관한 국제협약」
3. 「국제 해상충돌 예방규칙 협약」
4.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
5. 「상선의 최저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6.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7.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에 관한 국제협약」

② 제1항제5호의 「상선의 최저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을 적용할 때 1994년 3 월31일 이전에 용골(선박 바닥 중앙의 길이 방향 지지대를 말한다)이 거치된 선박에 대하여는 같은 협약의 적용으로 인하여 선박의 구조 또는 거주설비의 변경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항만국통제를 실시한다. <개정 2021. 1. 5.>

제17조(항만국통제에 따른 조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을 하려는 경우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국통제점검보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에는 법 제68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출항정지를 명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선박이 등록된 국가의 정부 또는 영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법 제68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선박의 선장·선박소유자·선급법인 또는 선박이 등록된 국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8조(공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0조에 따라 외국의 항만당국으로부터 출항정지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제2항에 따른 해당 선박의 명세를 해양수산부의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 또는 일간신문 등에 3개월의 범위에서 공표하거나 다음 각 호의 단체에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4. 30., 2023. 4. 11.>

1. 공단, 선급법인,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이하 “두께측정지정업체”라 한다),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및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
2.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협회

3.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른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

② 제1항에 따른 출항정지명령을 받은 선박의 명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명(한글 또는 영어로 표기)
2. 총톤수
3. 선박번호 및 국제해사기구번호
4. 선박소유자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을, 용선의 경우에는 선박운항자의 명칭을 말한다)
5. 외국 항만당국의 점검일, 항만명, 출항정지기간 및 출항정지 원인

③ 해양수산부장은 선박의 명세를 공표하는 경우 공표 대상자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9조(특별검사에 따른 조치 등) 해양수산부장은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시정·보완명령을 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해정지명령서 또는 시정·보완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0조(항해정지 등의 조치) 해양수산부장은 법 제75조제5항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수리·보완과 관련된 처분을 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해정지명령서 또는 시정·보완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1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은 법 제8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관할 구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1. 24., 2013. 3. 23., 2015. 7. 6., 2018. 4. 30., 2023. 6. 20.>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외국선박(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후 외국에서 등록하였거나 외국에서 등록할 예정인 선박을 말한다)이 시운전을 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 1의2. 법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두꺼측정지정업체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측정 업무의 정지와 그 고시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박 길이 등의 변경 또는 선박 설비의 개조에 대한 허가
3. 법 제1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의 발급 및 갱신
- 3의2. 법 제18조의2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취소
- 4의2.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성능검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회수·교환·폐기·판매중지의 명령 또는 형식승인의 취소

및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취소,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해당 명령 또는 형식승인 취소 사실의 공표

5. 법 제20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 자체검사기준 등의 승인과 그 변경승인 및 지도·감독
6.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또는 그 정지처분
7. 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의 발급 및 갱신
- 7의2. 법 제23조의2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 7의3.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취소
- 7의4.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의 성능검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의 회수·교환·폐기·판매중지의 명령 또는 형식승인의 취소 및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취소,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해당 명령 또는 형식승인 취소 사실의 공표
- 7의5.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의 승인·재검토 및 변경승인
- 7의6.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 7의7. 법 제24조의3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취소
- 7의8.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처분
8.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항만 내 반입 컨테이너에 대한 확인 및 조치의 지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에 필요한 조치,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치 비용의 청구·충당 및 공탁
- 8의2.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운송·저장 방법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 또는 승인
- 8의3. 삭제 <2018. 4. 30.>
9. 법 제68조에 따른 항만국통제
10.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검사·재검정 및 재확인. 다만, 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이 행하는 업무를 제외한다.
11. 법 제7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실 확인 및 출항정지명령
12.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명령
13.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출입·조사
14. 법 제75조제3항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보
15. 법 제75조제5항에 따른 항해정지명령 또는 수리·보완과 관련된 처분
- 15의2. 법 제78조에 따른 청문(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16.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17. 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삭제 <2010. 11. 24.>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 4. 30.>

[전문개정 2011. 4. 4.]

부칙 <제20300호, 2007. 9.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전운영계획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8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대행업무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이 영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협정내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장관과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체결한 협정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정내용 등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항질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항만법」, 「공유수면관리법」 또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공사 또는 작업을 제외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선박안전법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을 “「선박안전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으로 한다.

② 국제도로면세통과증서의담보하에행하는화물의국제운송에관한관세협약및컨테이너에관한관세협약의시행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선박안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③ 상법의일부규정의시행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선박안전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④ 선박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검사협회"라 한다) 또는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으로, “검사협회 또는

선급법인”을 “공단 또는 선급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검사협회”를 각각 “공단”으로 한다.

⑤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선박안전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으로, 같은 호 나목 중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및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 제2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선박안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선박안전법」 제29조에 따라”로 한다.

⑥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박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과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⑦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선박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시설 중”으로 한다.

⑧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선박검사기술협회”를 “「선박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선박검사기술협회”를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한다.

⑨ 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선박안전법」 제4조의 규정에서”를 “「선박안전법」 제29조에서”로 한다.

⑩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선박안전법」 제76조 및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관 또는 선박검사원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

제33조제2항 중 “「선박안전법」 제6조의3의 규정”을 “「선박안전법」 제18조”로 한다.

제38조 중 “「선박안전법」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을 “「선박안전법」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⑪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1호 중 “「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1호 중 “「선박안전법」 제5조”를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⑫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선박안전법」 제16조의2의 규정”을 “「선박안전법」 제41조”로 한다.

⑬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2의 제목 중 “「선박안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각각 “「선박안전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선박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⑮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호나목 중 “선박안전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선박안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722호, 2008. 2. 29.>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0> 까지 생략

<61>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제2항, 제4조제2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제2항 전단、제4항, 제12조제1항제4호, 제13조제1항제4호, 제14조제1항제4호, 제17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및 별표 2 비고 제1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본문 및 단서、나목、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3항제4호 단서,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같은 항 제1호、제2호、제3항, 제7조제2항, 제7조제4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7조제1항 전단,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 및 제22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

”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21조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를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장 소속 해양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2>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2504호, 2010. 11.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29호, 2011. 4. 4.>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용적률 산정에 관한 적용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4443호, 2013. 3. 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7>까지 생략

<118>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1항제4호, 제13조제1항제4호, 제14조제1항제4호,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본문·단서, 같은 호 나목,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3항제4호 단서,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

2항·제4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9조 및 제20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119>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6385호, 2015. 7. 6.>

이 영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43호, 2018. 4. 30.>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39호, 2018. 9.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건설기계(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에 따른 준설선에 한정한다)로서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하여 「항만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그 검사의 절차, 방법 및 시기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30106호, 2019. 10. 8.> (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30876호, 2020. 7. 28.> (항만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1) 중 “ 「항만법」 제29조의3제1항 ”을 “ 「항만법」 제39조제1항 ”으로 한다.

⑫부터 3!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31380호, 2021. 1. 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3402호, 2023. 4.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34호, 2023. 4. 25.>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 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3517호, 2023. 6. 7.>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 ”를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3557호, 2023. 6. 20.>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88호, 2024. 11. 12.>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선박안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11. 12.>

선체 두께측정업체의 지정기준(제4조의2 관련)

1. 시설 및 장비 기준: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추 것. 이 경우 해당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가. 선체두께 측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소를 갖추 것
 - 나. 도장된 선체의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펄스(pulse)반사법 측정장비[탐촉자(探觸子)를 사용하는 다중반사 방식의 디지털 측정장비를 말한다]를 갖추 것
2. 인력 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2명 이상 갖추 것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초음파비파괴검사 분야 기능사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선체두께 측정 업무에 종사하거나 선체두께 측정 관련 현장 실무교육을 받은 사람
 - 나.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업무규정 기준: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갖추 것
 - 가. 선체두께 측정 절차에 관한 사항
 - 나. 선체두께 측정위치의 선정 및 식별 등 측정준비에 관한 사항
 - 다. 선체두께 측정 업무의 감독에 관한 사항
 - 라. 선체두께 측정 결과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선박안전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18. 4. 30.>

협정의 내용(제10조제3항 관련)

1. 대항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관한 사항

가. 조직

- 1) 검사의 수행, 검사기준의 개발 및 선박안전기술의 개발을 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갖추는 것
- 2) 우리나라 모든 해역을 담당할 수 있는 지역 사무소를 갖추는 것

나. 검사원

- 1) 선박검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를 확보할 것
- 2) 선박검사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제도를 갖추는 것

다. 기술개발

- 1) 검사기준을 개발하고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 2) 품질관리능력을 갖추는 것

라.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마. 경영체계

- 1) 이해관계 직무 회피, 입사 후 종전 근무지 관련 업무 배제 및 동일 민원지역 장기간 연속근무 제한, 윤리강령 제정 및 윤리교육 시행 등의 자체 실정에 맞는 윤리경영체계를 갖추는 것
- 2) 대항업무의 품질유지, 안전 확보, 환경오염 방지 및 공정성과 재정적 독립성 등의 보장을 위한 품질관리체계를 갖추는 것

바. 그 밖에 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유지할 것

2. 협정 이행에 관한 사항

가. 대항업무의 범위

나. 외국 항만당국으로부터 항만국통제로 지적된 사항의 통보

다. 검사대행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제공

- 1) 선박검사원의 선임 및 해임
- 2) 발급된 증서
- 3) 기술자료

라. 품질관리시스템의 운영

마. 정부 또는 정부를 대신한 제3자의 정기적인 감사 수행

바. 기밀유지

사. 선박검사원의 자격

아. 협정의 개정

자. 손해배상책임

차. 협정해지요건

※ 비고

협정의 내용 중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선박검사 및 도면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의 대행범위, 감독방법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구상(求償)에 대비한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은 국제해사기구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선박안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6. 2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채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채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바.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 10일 이내의 기간이 지난 경우 2)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50만원 외에 매 1일 초과 시마다	법 제89조 제2항제1호		150 1	
나. 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인된 도면을 선박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89조 제2항제2호	150	250	500
다.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검사증서등을 선박(소형선박은 제외한다) 안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89조 제2항제3호의2	150	250	500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9조 제2항제3호의3	250	350	500
마. 법 제18조제8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 또는 변경승인시험에 합격한 선박용물건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89조 제2항제4호	150	250	500
바.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89조 제2항제4호의2	250	350	500
사.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한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9조 제2항제4호의3	250	350	500
아.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복원	법 제89조 제26	200	350	500

성자료를 선장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제2항제7호				
자. 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선박위치 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경우	법 제89조 제3항	40	70	100	
차.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선장의 전 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한 경우	법 제89조 제2항제8호	200	350	500	
카.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항해용 간 행물을 선박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89조 제2항제9호	150	250	500	
타.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타 실의 시야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89조 제2항제10호	150	250	500	
파.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타 실과 조타기(操舵機)가 설치된 장 소 사이에 통신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89조 제2항제11호	150	250	500	
하.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 하중등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9조 제2항제12호	150	250	500	
거. 법 제3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한 하중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하역설 비를 사용한 경우	법 제89조 제2항제13호	150	250	500	
너. 법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역 설비검사기록부 등의 서류를 선내 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89조 제2항제14호	150	250	500	
더.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 반하여 화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9조 제2항제15호	150	250	500	
러.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유독성가 스 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機器) 및 이에 관한 사 용설명서를 선장에게 제공하지 않 은 경우	법 제89조 제2항제16호	150	250	500	

며.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 제89조 제2항제17호	150	250	500
버.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 제89조 제2항제19호	150	250	500
서.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의 복원성·화물의 성질 및 적재방법에 관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89조 제2항제21호	150	250	500
어.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 제89조 제2항제22호	150	250	500
저.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을 적재·운송 또는 저장한 경우	법 제89조 제2항제23호	150	250	500
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운송 또는 저장방법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 또는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89조 제2항제24호	200	350	500
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고 위험물을 취급한 경우	법 제89조 제2항제24호의2	150	250	500
터.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강화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89조 제2항제25호	200	350	500
퍼. 법 제43조제3항을 위반하여 예인선항해검사증서를 예인선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89조 제2항제26호	150	250	500
허. 대한민국 선박의 소유자가 법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외국 항만 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인하여 출항정지된 경우	법 제89조 제2항제27호	200	350	500
고.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5조제1	법 제89조	150	250	500

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제2항제28호			
-------------------------------	---------	--	--	--

비고

가목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을 과태료 금액의 상한으로 한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25.] [해양수산부령 제813호, 2026. 8. 25.,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51 - 773 - 5833, 58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 3.>

1. “선령(船齡)”이란 선박이 진수(進水)한 날부터 지난 기간을 말한다.
2. 삭제 <2010. 11. 18.>
3. “위험물산적운송선”이란 액체상태의 위험물을 산적(散積)하여 운송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선박을 말한다.
4. “국제항해”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항구에 이르는 항해 또는 그 반대의 항해를 말한다.
- 4의2. “수면비행선박”이란 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5. “검사기준일”이란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해마다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제3조(부유식 해상구조물)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14., 2010. 6. 17., 2013. 3. 24., 2020. 6. 17., 2021. 6. 30.>

1. 이동식 시추선 : 액체상태 또는 가스상태의 탄화수소, 유황이나 소금과 같은 해저 자원을 채취 또는 탐사하는 작업에 종사할 수 있는 해상구조물(항구적으로 해상에 고정된 것은 제외한다)
2. 수상호텔, 수상식당 및 수상공연장 등으로서 소속 직원 외에 13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해상구조물(항구적으로 해상에 고정된 것은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름 또는 폐기물 등을 산적하여 저장하는 해상구조물
 - 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에 따른 기름
 - 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
 - 다.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하수, 분뇨 및 하수도·공공하수도·하수처리구역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준설물질 및오니류(오염 침전물류)
 -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

- 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축분뇨
- 바.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사람의 일상적인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분뇨
- 4. 법 제41조에 따른 위험물을 산적하여 저장하는 해상구조물

제4조(선박시설) 법 제2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8. 9. 4., 2020. 7. 30.>

1. 선체
2. 기관
3. 돛대
4. 배수설비
5. 조타(操舵)설비
6. 계선(繫船)설비 : 배를 항구 등에 매어 두기 위한 설비
7. 양묘(揚錨)설비 : 닻을 감아올리기 위한 설비
8. 구명설비
9. 소방설비
10. 거주설비
11. 위생설비
12. 항해설비
13. 적부(積付)설비 : 위험물이나 그 밖의 산적화물을 실은 선박과 운송물의 안전을 위하여 운송물을 계획적으로 선박 내에 배치하기 위한 설비
14. 하역이나 그 밖의 작업설비
15. 전기설비
16. 원자력설비
17. 컨테이너설비
18. 승강설비
19. 냉동·냉장 및 수산물처리가공설비
- 19의2. 「항만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항만건설장비(이하 “항만건설장비”라 한다)
20. 선박의 종류·기능에 따라 설치되는 특수한 설비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설비

제5조(임시승선자) 법 제2조제9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선박의 항해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2. 6. 26., 2013. 3. 24., 2018. 11. 20., 2020. 6. 17., 2025. 2. 27.>

1. 선원과 동승하여 생활하는 선원의 가족
2. 선박소유자(선박관리인 및 선박임차인을 포함한다) 및 선박정비, 화물관리, 안전관리 등 해당 선박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선박회사의 소속 직원과 해당 선박의 수리작업 등을 위한 작업원

3. 시험·조사·지도·단속·점검·실습에 관한 업무에 사용되는 선박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승선하는 사람
4. 도선사, 운항관리자, 세관공무원, 검역공무원, 선박검사관, 선박검사원 등으로서 선원업무가 아닌 업무를 하는 자
5.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상호텔, 수상식당 및 수상공연장 등의 소속 직원과 이를 이용하는 자
6. 삭제<2018. 11. 20.>
7. 삭제<2010. 11. 18.>
8.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선박을 이용하여 「항만법」에 따른 항만을 견학하는 자
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의 화물관리인(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은 운전자를 포함한다)
 - 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운송하는 차량
 - 나.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
 - 다. 산소공급장치를 가동하여 살아 있는 수산물을 운송하는 차량
 - 라.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른 화약류, 인화성 액체류 또는 가연성 물질류 등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량
10. 해당 선박의 출항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공익 목적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제3호에 따른 선박에 승선하는 사람
11. 해양시설의 건설·유지보수·운영 등 해상산업활동에 종사하는 산업인력

제6조(적용선박) 「선박안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3)에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0. 6. 17., 2013. 3. 24., 2018. 9. 4., 2023. 4. 12.>

1. 13명 이상의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2. 제3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름 또는 폐기물 등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
3. 법 제41조에 따른 위험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
4. 삭제<2023. 4. 12.>
5. 삭제<2023. 4. 12.>

제7조(계선기간 등의 서류 제출) ①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려는 선박소유자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계선사유서에 해당 선박의 선박검사증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② 제1항에 따른 계선사유서의 계선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이 끝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적용완화) 법 제3조제3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긴급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8. 11. 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 가.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조난자를 구조하는 경우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선박이 응급환자 또는 산불 등 화재 진화에 필요한 인력을 수송하는 경우
2. 기상 여건의 악화, 풍랑(風浪)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항해구역을 벗어나는 경우

제9조(적용배제 등에 대한 공고)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의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 관보 또는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으로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제2장 선박의 검사

제10조(건조검사)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조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박의 건조를 시작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5. 7. 15., 2018. 5. 1., 2019. 8. 20.>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도면{도면승인을 한 대행검사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건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2. 법 제18조제10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증서
3. 법 제20조제4항 단서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서(법 제20조제4항 본문에 따른 지정사업장에서 자체 발행한 합격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예비검사증서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는 제4조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5호의 선박시설과 만재흘수선(滿載吃水線)에 대하여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검사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5. 7. 15.>

1. 선박검사관의 성명(대행검사기관이 대행하는 경우 선박검사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검사완료일 및 검사장소
3. 다음 검사 기준일 및 검사종류

④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건조검사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 7. 15.>

제11조(별도건조검사)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별도건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조검사신청서에 별도건조검사를 받기 위하여 승인받은 도면(도면승인을 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② 별도건조검사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박시설과 만재흡수선에 대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별도건조검사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2조(정기검사)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조검사 및 별도건조검사 신청 시에 첨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5. 7. 15., 2018. 5. 1., 2018. 11. 20.>

1. 제10조제4항 또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건조검사증서 또는 별도건조검사증서(건조검사 또는 별도건조검사를 정기검사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2. 정기검사 관련 승인도면(도면승인을 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3. 법 제18조제10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증서

4. 법 제20조제4항 단서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서

5.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예비검사증서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선박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해당 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선박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정기검사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8. 5. 1., 2018. 11. 20.>

1. 선박검사증서

2. 법 제18조제10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증서

3. 법 제20조제4항 단서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서

4.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예비검사증서

5.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검사기록부

제13조(선박검사증서의 서식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여객선과 위험물산적운송선은 선박길이에 관계없이 제2호에 따른 서식으로 한다.

1.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의 선박 : 별지 제5호서식

2. 선박길이 12미터 이상의 선박 : 별지 제6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박검사증서를 대행검사기관이 발행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발행한다는 사실을 나타내야 한다.

③ 법 제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5. 7. 15.>

1. 선박검사관의 성명

2. 검사완료일 및 검사장소

3. 다음 검사 기준일 및 검사종류

4. 최대승선인원 또는 선박의 길이가 변경된 경우 주요 변경내용. 이 경우 변경 사유 및 변경 날짜는 선박검사증서의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만재흘수선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만재흘수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 6. 17.>

1. 국제항해 및 근해구역 이상의 항해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표시하는 만재흘수선의 종류별로 적용되는 대역 또는 구역, 계절기간 또는 기간 및 이에 대응하는 건현(乾舷) : 별표 2(이 경우 대역 또는 구역별로 적용되는 해면 및 계절기간은 별표 3과 같다)

2. 갑판에 목재를 실어 운송하는 선박 : 제1호 준용

3. 국제항해를 하지 아니하는 선박길이 12미터 이상의 선박에 표시하는 만재흘수선의 종류별로 적용되는 구역 및 건현 :

구분	적용되는 구역	건현
해수 만재흘수선	해면	해수 건현
담수 만재흘수선	비중 1,000인 수면	담수 건현

② 만재흘수선의 표시는 선박길이의 중앙 양쪽 가장자리의 외판(外板)에 용접 등 항구적인 방법으로 하고, 외판과 구별되는 한 가지 색으로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제15조(항해구역의 종류)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항해구역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수구역(平水區域)

2. 연해구역

3. 근해구역

4. 원양구역

② 영 제2조제1항제3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별표 4의 수역을 말한다.<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8. 9. 4., 2025. 2. 27.>

③ 영 제2조제1항제3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별표 5의 수역을 말한다.<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8. 9. 4., 2025. 2. 27.>

- ④ 근해구역은 동쪽은 동경 175도, 서쪽은 동경 94도, 남쪽은 남위 11도 및 북쪽은 북위 63도의 선으로 둘러싸인 수역을 말한다.
- ⑤ 원양구역은 모든 수역을 말한다.

제16조(항해구역의 지정)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항해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요청, 선박의 구조 및 선박시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8.>

② 외국의 동일 국가 내의 항구 사이 또는 외국의 호소(湖沼: 호수와 늪)、하천 및 항내의 수역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의 항해구역은 제15조에 준하여 평수구역、연해구역 또는 근해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 7. 15., 2021. 6. 30.>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별도건조검사를 받은 선박에 대하여는 해당 선박의 크기、구조、용도 등을 고려하여 항해구역을 제한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항해구역 외의 예외적 항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항해구역 외의 구역을 항해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외국에 선박매각 등을 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단 한 번의 국제항해를 하는 경우
2. 선박을 수리하거나 검사를 받기 위하여 수리할 장소 또는 검사를 받을 장소까지 항해하는 경우
3. 항해구역 밖에 있는 선박을 그 해당 항해구역 안으로 항해시키는 경우
4. 항해구역의 변경을 위하여 변경하려는 항해구역으로 선박을 항해시키는 경우
5. 접적지역(대연평도, 소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및 백령도 부근 해역을 말한다)을 항해하는 선박으로서 해당 선박의 항해구역 중 일부가 군사목적상 항해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그 구역을 우회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항해구역 외의 구역을 항해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선박이 임시로 항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최대승선인원의 산정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은 여객, 선원 및 임시 승선자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8. 11. 20., 2020. 6. 17.>

1. 승선인원에 산입되지 않는 사람
 - 가. 선내 관람과 관련하여 승선하는 사람, 하역、수리작업、해상공사 등을 위한 작업원 또는 선원 교대자 등으로서 해당 선박의 정박 중에만 승선하는 자
 - 나. 선박의 입항, 출항 및 정박 중에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승선하는 도선사, 운항관리자, 세관공무원, 검역공무원, 선박검사관 및 선박검사원 등
 - 다. 1세 미만인 유아
2. 여객실, 선원실, 그 밖의 최대승선인원을 산정하는 장소에 화물을 실은 경우에는 그 화물이 차지하는 장소에 상응하는 인원 수를 제외하고 산정
3.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의 경우 1세 이상 12세 미만인 자는 2명을 1명으로 산정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정된 인원수의 범위에서 최대승선 인원의 수를 제한하여 지정할 수 있다.
-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9조(중간검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에 제12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선박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중간검사 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8. 11. 20.>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1. 18.>

구분	종류	검사시기
가. 여객선, 원자력선, 잠수선, 고속선, 수면비행 선박(여객용만 해당한다) 및 선령 30년 이상 선박으로서 선박길이 24미터 이상인 선박	제1종 중간 검사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1) 평수구역만을 항해하는 선박길이 24미터 미만인 선박 (가목의 선박은 제외한다) 2) 삭제 3) 준설토 운반부선 및 부유식 해상구조물 4)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인 범선	제1종 중간 검사	정기검사 후 두번째 검사기준일 전 3개월부터 세 번째 검사기준일 후 3개월까지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박	제1종 중간 검사	정기검사 후 두번째 또는 세번째 검사기준일 전 후 3개월 이내, 다만, 전저검사는 지난번 전저검사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종 중간 검사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정기검사 또는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의 검사기준일은 제외한다)
비고 1. "고속선"이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고속선을 말한다. 2. "전저검사"란 선박의 밑 부분에 대한 검사를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중간검사를 생략한다. <개정 2018. 9. 4., 2025. 2. 27.>

- 총톤수 2톤 미만인 선박
- 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평수구역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다만, 영 제2조제1항제3호가목2)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 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연해구역을 운항하는 선박 중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선박
- 삭제 <2010. 11. 18.>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제1종 중간검사와 제2종 중간검사의 검사사항은 선박시설, 만재흡수선 및 무선설비(선박위치발신장치를 포함한다)로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는 장기항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검사기준일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검사완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을 새로운 검사기준일로 한다.

⑥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는 선박검사증서의 뒤 쪽에 다음 검사시기와 검사종류 및 선박검사관의 성명(대행검사기관이 대행하는 경우 선박검사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어야 한다.

제20조(중간검사시기의 연기신청)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중간검사시기를 연기받으려는 선박 소유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중간검사시기연기신청서에 해당 선박의 항해일정 및 현재의 위치를 나타내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중간검사시기가 끝나기 3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0. 11. 18., 2013. 3. 24., 2023. 4. 12.>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항해일정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검사기준일부터 1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검사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검사시기와 검사종류 등을 선박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0. 11. 18., 2013. 3. 24.>

③ 제2항에 따라 연기받은 기간 내에 해당 선박이 중간검사를 받을 장소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시기의 연기로 인하여 연기된 중간검사와 정기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제1종 중간검사와 제2종 중간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제1종 중간검사를 실시한다.

제21조(임시검사)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선박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임시검사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8. 5. 1., 2018. 11. 20.>

1. 선박검사증서

2. 임시검사 관련 승인도면(도면승인을 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3. 법 제18조제10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증서

4. 법 제20조제4항 단서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서

5.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예비검사증서

②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 또는 수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8. 9. 4., 2020. 6. 17., 2021. 6. 30.>

1. 선박의 선박길이, 너비, 깊이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체 주요부의 변경으로 선체의 강도, 수밀성(水密性: 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성질) 또는 방화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

가. 상갑판 아래의 선체, 선루(船樓) 또는 기관실위벽(圍壁)의 폭로부(暴露部)

나. 갑판실(승선자가 거주하거나 항상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측벽 또는 정부갑판(頂部甲板)

다. 선루갑판 아래의 폭로부 외판

라. 격벽에 설치되어 폐위(閉圍)구역을 보호하는 폐쇄장치(목제창구덮개 또는 창구복포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개조 또는 수리

가. 기관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의 교체

나. 선박의 추진과 관계있는 기관의 교체

다. 선박의 추진과 관계있는 기관의 성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 주요부의 개조 또는 수리

3. 타(舵) 또는 조타장치의 변경으로 선박의 조종성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

4. 탱크, 펌프실, 그 밖에 인화성 액체 또는 인화성 고압가스가 새거나 축적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전선로를 교체·변경하는 수리

5. 항만건설장비의 설치·변경 등으로 선박의 복원성 또는 항만건설장비의 성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임시검사의 내용 및 시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선박검사증서의 뒤쪽에 그 내용 및 시기를 적어야 한다.<신설 2018. 5. 1.>

④ 법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5. 7. 15., 2018. 5. 1., 2020. 6. 17.>

1. 선박시설에 관한 선박용물건 중 선박에 고정 설치되는 것으로서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다만, 여객선 및 선박길이 24미터 이상의 선박이 아닌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에 고정 설치되는 것으로서 제4조제8호, 제9호, 제12호 및 제14호의 선박시설로 한정한다.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만재흘수선을 새로 표시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복원성기준을 새로 적용받거나 그 복원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선박용물건을 신설·증설·교체 또는 제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원자력선의 원자로에 연료체를 투입하거나 원자로 안에서 연료체의 배치를 바꾸려는 경우

5. 보일러 안전밸브의 봉인을 개방하여 조정하려는 경우

6.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확인받은 하역설비의 제한하중, 제한각도 및 제한반지름을 변경하려는 경우

7. 승강설비의 제한하중 또는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8. 삭제<2018. 5. 1.>

9.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제1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2호의 경우 검사시설이 없는 섬에서 선박검사를 받기 위하여 검사시설이 있는 장소로 항해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2018. 5. 1.>

⑤ 제2항에 따라 개조 또는 수리를 하는 선박소유자는 해당 시설의 개조 또는 수리에 착수한 때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 5. 1.>

- ⑥ 선박소유자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임시검사의 시기를 앞당겨 받을 수 있다.<개정 2018. 5. 1.>
- ⑦ 선박소유자는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받을 때에 임시검사사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8. 5. 1.>
- ⑧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는 선박검사증서의 뒤 쪽에 다음 검사시기, 검사종류 및 선박검사관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개정 2018. 5. 1.>
- ⑨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임시변경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개정 2018. 5. 1.>

제22조(임시항해검사)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임시항해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의 건조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에 해당 선박의 운항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인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8. 5. 1., 2018. 11. 20., 2020. 6. 17.>

② 제1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 대상 선박 중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외국선박에 대한 임시항해검사의 절차, 방법 및 검사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0. 6. 17., 2013. 3. 24.>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개정 2010. 6. 17.>

④ 법 제11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5. 7. 15.>

1. 선박검사관의 성명
2. 검사완료일 및 검사장소
3. 다음 검사 기준일 및 검사종류

제23조(국제협약검사증서의 서식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6. 26., 2020. 6. 17., 2025. 2. 27.>

1. 여객선(원자력여객선은 제외한다) : 별지 제10호서식의 여객선안전증서
2. 원자력여객선 : 별지 제11호서식의 원자력여객선안전증서
3. 총톤수 3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화물선 : 별지 제12호서식의 화물선안전무선증서
4.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
 - 가. 별지 제12호서식의 화물선안전무선증서
 - 나. 별지 제13호서식의 화물선안전구조증서
 - 다. 별지 제14호서식의 화물선안전설비증서
 - 라.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화물선안전증서
5. 원자력화물선 : 별지 제15호서식의 원자력화물선안전증서
6. 액화가스산적운송선

가. 2016년 7월 1일 이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선박으로서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코드에 규정된 물질을 운송하는 선박 :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

나. 1986년 7월 1일 이후부터 2016년 6월 30일 이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선박으로서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코드에 규정된 물질을 운송하는 선박: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

다. 1986년 6월 30일 이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선박: 별지 제17호서식의 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

7. 위험화학품산적운송선

가. 1986년 7월 1일 이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위험화학품산적운송선으로서 국제산적화학물코드에 규정된 물질을 운송하는 선박: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

나. 1986년 6월 30일 이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선박: 별지 제19호서식의 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부속서 제7장제2규칙에서 규정하는 위험물을 포장된 형태나 산적고체 형태로 운송하는 선박: 별지 제20호서식의 위험물운송적합증서

가. 1984년 9월 1일 이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여객선

나. 1984년 9월 1일 이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

다. 1992년 2월 1일 이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화물선

9. 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 중 고속선안전코드의 적용을 받는 다음 각 목의 고속선

가. 1996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2년 6월 30일 이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고속선: 별지 제21호서식의 고속선안전증서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고속선운항허가증

나. 2002년 7월 1일 이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고속선: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속선안전증서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고속선운항허가증

10. 국제방사능핵연료 화물운송코드에서 규정하는 방사능물질을 운송하는 선박: 별지 제25호서식의 국제방사능핵연료화물운송적합증서

11.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중 특수목적선 안전코드의 요건에 적합한 선박: 별지 제26호서식의 특수목적선안전증서

12. 여객선이나 화물선으로서 선박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선박: 별지 제27호서식의 국제만재흘수선증서

13.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중 국제산업인력안전코드의 요건에 적합한 선박: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산업인력안전증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면제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3. 3. 24.>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으로서 법 제2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제협약검사증서에 관한 요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된 선박

2.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여객선 및 총톤수 300톤 이상의 화물선으로서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임시변경증이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를 발급받아 단일의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

③ 제1항제12호의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국제만재흡수선면제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1. 잠수선, 수중익선, 공기부양선 및 임시항해검사증서를 발급받은 선박과 그 밖에 그 구조상 만재흡수선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선박

2.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임시변경증이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를 발급받아 단일의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

3. 법 제2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만재흡수선증서에 관한 요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된 선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국제협약검사증서를 대행검사기관이 발행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발행한다는 사실을 나타내야 한다.

⑤ 법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협약검사가 끝난 후 새로운 국제협약검사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국제협약검사증서에 해당 국제협약검사가 완료되었다는 내용을 적어 선박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법 제12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5. 7. 15.>

1. 선박검사관의 성명

2. 검사완료일 및 검사장소

제24조(국제협약검사의 종류)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17.>

1. 최초검사 : 최초로 국제항해에 사용하는 경우 받게 되는 검사

2. 정기검사 :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 받게 되는 검사

3. 중간검사 : 국제협약검사증서의 두 번째 검사기준일 또는 세 번째 검사기준일 전후의 3개월 이내에 받게 되는 검사

4. 연차검사 : 국제협약검사증서의 매 검사기준일 전후의 3개월 이내(제3호의 중간검사를 받는 연도의 검사기준일은 제외한다)에 받게 되는 검사

5. 임시검사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으로서 제21조제2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받게 되는 검사

제25조(국제협약검사의 신청)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국제협약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국제협약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시기가 선박검사 시기와 같을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1. 선박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해검사증서
 2.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검사필증(여객선안전증서, 원자력여객선안전증서, 화물선안전무선증서 또는 원자력화물선안전증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3. 해당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구조 및 설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 및 자료(제23조제2항의 면제증서나 같은 조 제3항의 국제만재흡수선면제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소지하고 있는 해당 국제협약검사증서(최초로 국제협약검사증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②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의 소유자도 그 구조 및 설비가 해당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선박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제26조(국제협약검사증서의 효력정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협약검사증서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1. 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 법 제41조제2항, 법 제42조제1항 및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24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선박
3. 선박의 국적이 변경된 경우

제27조(국제협약 위반 선박에 대한 조사방법 등)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국제협약 위반 선박에 대한 조사방법은 법 제68조 및 법 제69조에 따른 항만국통제 및 특별점검을 말한다.

제28조(외국선박에 대한 국제협약검사증서의 발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외국선박에 대하여 국제협약검사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국제협약검사증서에 해당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발행하였다는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20. 6. 1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외국선박에 대하여 제2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국제만재흡수선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서의 발급을 요청한 외국정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송부해야 한다.<신설 2020. 6. 17.>

1. 국제만재흡수선증서 사본
2. 건현 계산에 사용된 검사 보고서 사본
3. 건현 계산서 사본

제29조(도면의 승인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도면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도면승인(변경)신청서에 별표 7에서 정한 해당 선박의 검사종류별 관련 도면 3부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면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5. 7. 15.>

1. 도면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이 없는 경우 해당 선박의 도면

2. 같은 조선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승인된 도면에 따라 건조되는 같은 형태의 후속 선박의 도면
3. 대항검사기관을 변경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의 기존 도면. 다만, 기존 도면이 해당 선박과 같지 아니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해당 대항검사기관에서 설계하거나 설계 감리한 도면

② 법 제13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 7. 15.>

1. 별표 8에 따른 증인(證印)
2. 도면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선박검사관의 성명
3. 승인 날짜

③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승인받은 도면은 선장이나 선원이 즉시 꺼내어 확인할 수 있는 선박내의 적당한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선박 내의 장소가 좁아 도면을 갖추어 둘 수 없는 선박으로서 선박소유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을 통하여 도면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 8. 20.>

제30조(검사의 준비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선박의 검사종류별 준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1. 건조검사 및 별도건조검사 준비사항 : 별표 9
2. 정기검사 준비사항 : 별표 10
3. 중간검사 준비사항 : 별표 11
4. 임시검사 준비사항 : 별표 10 중 해당 선박시설
5. 임시항해검사 준비사항 : 별표 10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사항

② 삭제<2018. 5. 1.>

제31조(검사의 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설비 및 잠수설비 등 특수한 구조나 설비를 가진 선박에 대한 검사의 준비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8. 5. 1.>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나 중간검사에서 해당 정기검사일이나 중간검사일 전 6개월 이내에 부분적인 수리나 정비를 하고 임시검사에 합격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검사의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8. 5. 1.>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별표10의 제2호자목(효력시험만 해당한다), 제3호마목, 제4호가목·다목, 제5호다목 및 제6호나목 외의 검사준비를 면제한다.<개정 2009. 2. 13., 2018. 5. 1.>

④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정기검사 및 제1종 중간검사에 대하여는 별표 10 제1호가목 및 별표 11 제1호가목의 선체에 관한 준비사항 중 선체에 대한 입거(入渠) 또는 상가(上架)준비를 수중검사 준비로 갈음할 수 있고, 별표 10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준비는 면제(제1종 중간검사 시에도 적용한다)할 수 있다.<개정 2018. 5. 1.>

⑤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선령 30년 이상의 선박길이 24미터 이상인 선박에 대하여는 별표 11 제1호에 따른 제1종 중간검사준비사항 중 같은 표 제1호나목1)부터 6)까지의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연속하여 3회를 면제할 수 없다.<개정 2018. 5. 1.>

⑥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별표 11 제1호가목의 선체에 관한 준비사항 중 별표 10 제1호가목의 선체에 대한 입거 또는 상가준비를 수중검사 준비로 갈음할 수 있고, 별표 10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3호나목의 준비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여객선에 대하여는 연속하여 3회를 갈음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개정 2015. 7. 15., 2018. 5. 1.>

1. 내수면안에서만 항해하는 선박

2. 선령 15년 미만인 선박(여객선은 제외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수중검사 결과 부식 또는 손상 등으로 인하여 입거 또는 상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거 또는 상가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3. 14., 2013. 3. 24.>

⑧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수중검사준비와 그 검사방법 등은 별표 14와 같다.

⑨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외의 검사준비 및 서류제출 등에 대하여는 별표 15와 같이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8. 5. 1.>

제31조의2(선체두께의 측정)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선체두께의 측정은 선령 10년 이상의 강선(鋼船)으로서 여객선 및 선박길이 24미터 이상인 선박에 대하여 해당 선박의 정기검사시에 측정하며, 그 측정범위 및 측정방법은 별표 15의2와 같다.

②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내에서 선체두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이하 “두께측정지정업체”라 한다)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외국의 두께측정업체로부터 측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외국의 두께측정업체의 인정에 관하여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등업무를 대행하는 공단 및 선급법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5. 1.]

제31조의3(두께측정업체의 지정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두께측정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신청서에 선체두께 측정 업무에 관한 업무규정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제38조제1항에서 같다) 및 국가기술자격증(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25.>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인이 영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선체두께 측정 업무를 수행하는 두께측정업체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두께측정업체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두께측정업체의 주소 및 전화번호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이하 “두께측정지정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영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제3항 각 호의 사항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두께측정지정업체에 제4항제1호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4항제2호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관할 두께측정지정업체에 대하여 영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 유지 여부 및 업무 수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⑦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두께측정지정업체의 지정 취소 또는 측정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5의3과 같다.

⑧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두께측정지정업체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측정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5. 1.]

제32조(선박시설의 변경허가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복원성 기준”은 별표 15의4와 같다. <개정 2018. 5. 1., 2020. 6. 17.>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의 대상은 별표 15의5와 같다. <개정 2020. 6. 17.>

③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 2018. 11. 20., 2020. 6. 17.>

1. 변경 또는 개조사항을 표시한 도면(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도면을 말한다)
2. 개조사항을 요약한 서류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별표 15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량 및 중심위치의 변화량을 산출한 계산서 및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복원성자료(이하 이 조에서 “복원성자료”라 한다)

나. 그 밖에 복원성 유지 의무 선박의 경우: 변경 또는 개조사항을 표시한 복원성자료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박구조변경허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조선(造船)·운항 분야 전문가 및 해당 기항지 또는 기항 예정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정하는 자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박구조변경허가에 관

한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5의5 제1호, 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문위원회에의 자문을 거쳐 심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 2020. 6. 17.>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의 내용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 2018. 11. 20.>

[전문개정 2015. 7. 15.]

제33조(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의 산정 사유) 영 제5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1. 1년 이상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선박을 상속하거나 매수한 경우
2.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제34조(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등) ① 영 제6조제1항 단서,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협약검사”란 제24조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②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3. 3. 24.>

1. 선박이 검사받을 장소에 있지 아니하여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해당 선박의 현재의 위치를 나타내는 서류
2. 새로운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를 선박에 갖추어 둘 수 없는 경우 : 현재 비치하고 있는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
3. 짧은 거리의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 현재 비치하고 있는 국제협약검사증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서나 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3. 3. 24.>

1. 제2항제1호의 경우 : 별지 제35호서식의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승인서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 연장승인된 유효기간이 적혀 있는 현재의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

제3장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등

제35조

[종전 제35조는 제42조의2로 이동 <2018. 5. 1.>]

제36조(형식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형식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42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용물건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에 같음하여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각각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8. 5. 1., 2018. 11. 20., 2023. 7. 11.>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8조제4항에 따라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한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등 관련 서류 또는 제42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 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8. 5. 1., 2020. 6. 17.>

제37조

[종전 제37조는 제42조의3으로 이동 <2018. 5. 1.>]

제38조(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형식승인사항의 변경을 위한 형식승인시험시에는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서류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지정시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1., 2018. 5. 1., 2026. 8. 25.>

1. 사업체의 개요(연혁, 인원 및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삭제 <2011. 4. 11.>
 3. 수입허가서 사본(수입하려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으로 한정한다)
 4.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제조사양서, 구조도면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5. 제조하거나 수입할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제조 및 검사설비개요서(수입하여 시험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신청자가 보유한 설비개요서)
 6. 형식승인신청업체의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한 서류(품질관리에 관하여 국제표준화기구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서 사본)
 7. 제42조의2제2호 각 목에 따른 형식승인시험 면제대상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② 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하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을 받으려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지정시험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제출하고,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지정시험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지정시험기관이 별표 16의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③ 지정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법 제18조제1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기준에 따라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

④ 지정시험기관은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및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시험성적서(이하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제1항 각 호의 서류,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및 시험성적서 각 1부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과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업무에 관하여 협정을 체결한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8. 5. 1.>

제39조(일부 시험의 외부 의뢰 등)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다른 시험설비를 이용하거나 지정된 시험품목에 대한 시험의 일부를 다른 시험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일부시험의 외부의뢰 등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1. 외부에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기관이 해당 시험에 대한 시험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다른 시험설비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험설비가 해당 시험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으면 해당 시험설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서의 서식은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제40조(지정시험기관의 신청 등) ①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호와 관련된 정보를 국가기술자격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1. 4. 11., 2013. 3. 24.>

1. 시험기관의 연혁, 설립 목적, 주요 기능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2. 형식승인시험에 종사할 인원 및 그 자격을 적은 서류와 그 증빙서류[해당 시험업무 종사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형식승인시험을 하기 위한 시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서와 시험기기의 검정·교정 관리계획서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설비 이용계획서(다른 시험기관 이나 제조자의 시험설비를 임차하거나 형식승인시험을 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 다른 시험기관이나 제조자의 명칭, 소재지 및 주요 기능에 관한 사항
 - 나. 임차설비를 이용 또는 의뢰하려는 시험의 종류
 - 다. 설비 임차 또는 시험 의뢰의 사유

5. 시험품목별로 사용하는 시험설비와 시험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 및 시험방법을 적은 서류
6. 해당 시험항목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서(해당 시험항목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공인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시험설비를 확인하고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심사하여 신청 품목의 지정시험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정시험기관의 시험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청한 품목 중 일부 품목으로 한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 3. 14., 2013. 3. 24.>

제41조(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① 제40조제1항제2호, 제3호(검정·교정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5호의 지정요건에 변경이 생긴 지정시험기관은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44호서식의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5. 7. 1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내용 및 사유를 검토하여 형식승인시험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수리하고, 형식승인시험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시험기관에 개선·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3. 3. 24.>

제42조(시험내용 또는 시험품목의 변경) ① 지정시험기관이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목의 시험내용 또는 시험품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44호서식의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신청서에 제40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5. 7. 1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받은 품목의 시험내용 변경 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검토하여 형식승인시험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수리하고, 형식승인시험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시험기관에 개선·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3. 3. 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품목을 변경하려는 신청의 경우 그 시험품목의 변경내용 등을 검토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지정서를 변경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5. 7. 15.>

[제목개정 2015. 7. 15.]

제42조의2(형식승인시험의 면제)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09. 2. 13., 2010. 6. 17., 2013. 3. 24., 2018. 5. 1.>

1. 형식승인시험의 전부 면제

- 가. 형식승인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2년 동안 매년 1회 이상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나. 「산업표준화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선박용물건으로서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한 선박용물건

2. 지정시험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형식승인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가. 해당 형식승인시험 항목에 대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

나. 해당 형식승인시험 항목에 대하여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

다.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물건의 일부 요건을 변경하여 추가로 형식승인을 받거나 형식을 변경하는 경우

[제35조에서 이동 <2018. 5. 1.>]

제42조의3(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에 제38조제1항 각 호 중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8. 5. 1., 2018. 11. 20.>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8조제4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한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등 관련 서류 또는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8. 5. 1.>

[제37조에서 이동 <2018. 5. 1.>]

제42조의4(형식승인증서의 갱신) ① 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형식승인증서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0.>

1. 형식승인증서

2. 최근 2년 이내 형식승인증서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5. 1.]

제43조(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물건의 품질관리) 법 제18조제8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와 지정시험기관이 보관하여야 하는 선박용물건은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18. 5. 1.>

제44조(검정의 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9항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크기나 모양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

다)하고 별지 제46호서식의 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8. 5. 1.>

1. 형식승인 품명·형식 및 규격(규격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형식승인증서 번호 및 형식승인 일자

3. 제조연월일 표시 일련번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형식승인을 받은 제조공정, 부품, 자재 및 각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여 제조사양서대로 제조되었는지와 법 제18조제9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8. 5. 1.>

③ 법 제18조제10항에 따른 검정증서는 별지 제47호서식과 같으며, 검정의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는 별표 18과 같다. <개정 2018. 5. 1.>

제45조(지도·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해야 한다. <신설 2020. 6. 17.>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8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검토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8. 5. 1., 2020. 6. 17.>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해당 지정시험기관을 방문하여 시험방법 및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8. 5. 1., 2020. 6. 17.>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및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에 개선·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6. 17.>

제45조의2(새로운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적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11항에 따른 형식승인 시험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제45조의3에 따른 기술전문위원회가 심의한 형식승인 시험기준을 적용하여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전문위원회가 심의한 형식승인 시험기준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8. 5. 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할 경우 형식승인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술전문위원회에 심의의뢰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인에게 기술전문위원회의 심의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형식승인 시험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신청인 및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본조신설 2010. 2. 17.]

제45조의3(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 시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기술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3. 2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3. 3. 24.>

1. 형식승인 시험기준이 제정되지 아니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적용할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채택
2. 제1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식승인 시험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임기준 및 임기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4.>

[본조신설 2010. 2. 17.]

제45조의4(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신청) ① 법 제1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법 제18조제11항에 따른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제정 및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2018. 5. 1.>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제정 및 개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형식승인 시험기준 제정 및 개정 여부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4.>

[본조신설 2010. 2. 17.]

제45조의5(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①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형식승인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가.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
 - 나.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다.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형식승인증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가족관계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37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11.]

제46조(형식승인의 취소 및 효력정지) ①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와 효력정지 처분,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 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23. 7. 11.>

② 삭제 <2023. 7. 11.>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8. 5. 1., 2023. 7. 11.>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취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정시험기관에 통보해야 한다.<신설 2023. 7. 11.>

제46조의2(선박용물건 등의 성능검사)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인 경우
2.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9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종류의 선박용물건, 소형선박 다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함을 말한다.

1.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법 제18조제1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제2항에 따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과 제조단위번호가 동일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제조단위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과 동시에 법 제18조제9항 전단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의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지체없이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판매중지를 명하고, 판매중지를 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회수, 교환 또는 폐기를 명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결함이 특정 부품으로 인한 것이면, 결함 발생의 원인이 된 부품에 한정하여 교환을 명할 수 있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회수, 교환, 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47호의3서식의 회수, 교환, 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에 관한 사항
2.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중대한 결함 사실
3.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대표자의 이름 및 사업장 소재지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7. 11.]

제47조(지정사업장의 지정 및 설비기준)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15. 7. 15.>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설비로서 선박용물건별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중 외주 또는 구매하는 부분에 대한 설비를 제외한 설비를 말한다. 다만, 시험·검사설비의 경우 다른 사람의 시험·검사설비를 3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5. 7. 15.>

1. 절삭가공기계, 제봉설비, 용접기 등 제조 또는 정비설비
 2. 인장시험기, 내압시험기 등 시험 및 검사설비
- [제목개정 2015. 7. 15.]

제48조(지정사업장의 지정) 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지정사업장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5. 7. 15., 2018. 5. 1.>

1. 사업장의 연혁·조직 및 업무분장의 개요
2. 제47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요건이 포함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제조에 관한 설명서(지정제조사업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로 한정하며, 이하 “제조설명서”라 한다)
 - 가. 인정을 받으려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하 “인정대상물건”이라 한다)의 구조
 - 나. 인정대상물건의 성능 및 주된 재료
 - 다. 제조공정
 - 라. 품질관리
 - 마. 시험 및 검사체계
4. 다음 각 목의 요건이 포함된 선박용물건의 정비에 관한 설명서(지정정비사업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로 한정하며, 이하 “정비설명서”이라 한다)
 - 가. 분해 및 조립방법과 사용공구
 - 나. 부품 또는 부재별 점검 및 정비방법
 - 다. 부품 또는 부재별 사용시간과 손상정도 등에 의한 사용한도의 판정기준
 - 라. 조립 후의 조정방법
5.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한 자체검사기준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업장이 제47조에 따른 지정·설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서류 및 현장심사(이미 지정받은 품목과 같은 품목인 경우에 현장심사는 생략한다)를 통하여 확인한 후, 그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49호서식의 지정사업장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5. 7.

15., 2018. 5. 1., 2018. 11. 20.>

1. 지정사업장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지정사업장의 주소 및 전화번호
 3. 해당 지정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정비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증서의 번호, 품명, 규격 및 형식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08. 3. 14., 2018. 5. 1.>
- [제목개정 2015. 7. 15.]

제49조(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48조제2항에 따라 확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지정사업장지정(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5. 7. 15., 2018. 5. 1.>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내용 및 사유가 지정사업장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적합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49호서식의 지정사업장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8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5. 7. 15., 2018. 5. 1., 2018. 11. 20.>

제50조(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신청) 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제4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제조설명서 또는 정비설명서에 적합하게 제조 또는 정비되었음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크기 또는 모양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별지 제50호서식의 확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5. 7. 15.>

1. 지정사업장의 명칭, 지정번호 및 지정일자
2. 지정 품명·형식 및 규격(규격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조 또는 정비일자
4. 제조번호 또는 정비번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제조설명서 또는 정비설명서에 적합하게 제조 또는 정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3. 3. 24.>

③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51호서식과 같으며, 확인을 나타내는 표시는 별표 21과 같다.

제51조(자체검사 합격증서의 서식 등)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합격증서는 별지 제52호서식과 같으며,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는 별표 22와 같다.

제52조(지도·감독)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관할 지정사업장에 대하여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제조·정비 및 운용에 대한 지도·감독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5. 7. 15., 2018. 5. 1.>

제53조(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및 효력정지)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개정 2015. 7. 15.>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효력정지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3. 14., 2018. 5. 1.>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별표 23에 따른 처분이 효력정지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전단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3. 4. 25.>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8. 5. 1., 2023. 4. 25.>
[제목개정 2015. 7. 15.]

제54조(예비검사)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예비검사신청서에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도면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8. 11. 20.>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에 대하여 제조·개조·수리 또는 정비에 착수한 때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입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가 수입된 이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8. 5. 1., 2018. 11. 20.>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팽창식구명설비의 수리 또는 정비에 착수한 때부터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확인을 받은 곳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8. 11. 20.>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24의 기준에 맞는 시설 등을 갖추고 별지 제54호서식의 팽창식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8. 5. 1., 2018. 11. 20.>

1. 시설명세서
2. 별표 24 제2호가목에 따른 정비기술자의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별표 24 제4호에 따른 자체 정비기준

-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4항에 따른 확인신청을 받은 경우 그 팽창식구명설비 정비시설 등이 별표 24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55호서식의 팽창식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8. 5. 1., 2018. 11. 20.>
- ⑥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의 도면에 대한 승인 절차에 관하여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도면의 승인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9조제1항 중 “선박”은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로 본다.<개정 2018. 11. 20.>
- ⑦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증서는 별지 제56호서식과 같으며,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는 별표 25와 같다. 다만, 제3항에 따른 경우에는 예비검사증서를 갈음하여 정비기록부에 선박검사관이 서명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8. 11. 20.>
- ⑧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예비검사의 준비사항은 별표 26과 같다.<개정 2018. 11. 20.>

제4장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등

제55조(컨테이너형식승인 대상) 법 제2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인 컨테이너”란 바닥면적이 7제곱미터(윗부분에 모서리끼움쇠가 없는 컨테이너인 경우에는 14제곱미터) 이상인 컨테이너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제56조(컨테이너형식승인의 신청)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이하 “컨테이너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컨테이너의 형식별로 별지 제57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8. 5. 1., 2018. 11. 20., 2023. 7. 11.>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하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제출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별지 제58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8. 5. 1., 2020. 6. 17.>

제56조의2(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7. 11.>

1. 공단 또는 선급법인일 것
2.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검사를 담당할 검사원이 있을 것

②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3. 3. 24., 2023. 7. 11.>

1. 시험기관의 연혁, 설립목적, 주요기능 및 조직
2. 삭제<2023. 7. 11.>
3. 삭제<2023. 7. 11.>
4.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검사를 담당할 조직의 인력 구성

5.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의 방법 및 절차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 대행할 업무의 범위와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제61조에서 이동 <2023. 7. 11.>]

제57조

[종전 제57조는 제58조의2로 이동 <2023. 7. 11.>]

제58조(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의 신청) ① 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 후단에 따라 컨테이너의 형식승인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형식승인사항의 변경을 위한 형식승인시험의 경우에는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서류만 첨부한다)를 첨부하여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7. 11.>

1. 컨테이너의 제조사양서, 구조도면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2. 컨테이너의 제조 및 검사설비개요서

②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기준에 따라 시험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③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하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을 받으려는 컨테이너 및 재료를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제출하고,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그 시험비용은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 별표 27의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은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컨테이너에 대하여 별지 제58호의3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성적서(이하 “컨테이너시험성적서”라 한다) 및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 날인 또는 각인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성적서 및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각 1부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8. 5. 1., 2023. 7. 11.>

제58조의2(컨테이너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등)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8. 5. 1., 2018. 11. 20., 2023. 7. 11.>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8조제4항에 따라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 제출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별지 제60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변경사항이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변경인 경우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60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8. 5. 1., 2018. 11. 20.>

[제57조에서 이동 <2023. 7. 11.>]

제58조의3(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의 갱신) ①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

2. 최근 2년 이내에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에 따라 컨테이너를 제조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년 이내에 제조한 실적이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로 갈음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현장심사는 2년 이내에 컨테이너를 제조한 실적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거쳐 컨테이너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합한지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컨테이너형식승인의 갱신을 신청한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때에는 현장심사를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11.]

제59조(컨테이너검정의 신청 등) ①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컨테이너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컨테이너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23. 7. 1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컨테이너가 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64호서식의 컨테이너검정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23. 7. 11.>

③ 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은 별지 제65호서식과 같으며, 그 컨테이너안전승인판에 컨테이너검정의 합격을 나타내는 확인표시는 별표 28과 같다. <개정 2023. 7. 11.>

제60조

[종전 제60조는 제62조의3으로 이동 <2023. 7. 11.>]

제61조

[종전 제61조는 제56조의2로 이동 <2023. 7. 11.>]

제62조(지도·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해야 한다. <신설 2020. 6. 17.>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컨테이너시험성적서를 검토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8. 5. 1., 2020. 6. 17.>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해당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을 방문하여 시험의 방법 및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8. 5. 1., 2020. 6. 17.>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및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에 개선·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0. 6. 17.>

제62조의2(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①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이 경우 컨테이너형식승인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면 해당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 법 제2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나.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가족관계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58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11.]

제62조의3(컨테이너형식승인 취소 및 효력정지 등) ① 제23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와 효력정지 처분 및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취소와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29와 같다. <개정 2023. 7. 11.>

② 삭제<2023. 7. 11.>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3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8. 5. 1., 2023. 7. 11.>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취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3. 7. 11.>

[제목개정 2023. 7. 11.]

[제60조에서 이동 <2023. 7. 11.>]

제62조의4(컨테이너의 성능검사 등)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컨테이너인 경우
 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형식승인을 받은 컨테이너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컨테이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법 제23조의4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종류의 컨테이너 다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함을 말한다.

1. 컨테이너가 법 제23조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컨테이너가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구조적 안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제2항에 따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컨테이너와 제조단위번호가 동일한 컨테이너(해당 컨테이너의 제조단위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컨테이너와 동시에 법 제23조제7항 전단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의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지체없이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판매중지를 명하고, 판매중지를 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해당 컨테이너의 회수·교환 또는 폐기를 명해야 한다. 이 경우 컨테이너의 결함이 특정 부품으로 인한 것이라면, 결함 발생의 원인이 된 부품에 한정하여 교환을 명할 수 있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47호의3서식의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법 제23조의4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컨테이너의 형식승인에 관한 사항
2. 해당 컨테이너의 중대한 결함 사실
3.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대표자의 이름 및 사업장 소재지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7. 11.]

제63조 삭제 <2023. 7. 11.>

제64조(안전점검의 기준) ①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점검방법에 대하여 제65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8. 5. 1., 2023. 4. 12.>

1. 정기점검방법 :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 부속서 I 제2규칙제2항에 따른 점검 연월에 하는 안전점검

2. 계속점검방법 :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 부속서 I 제2규칙제3항에 따른 점검 연월에 하는 안전점검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방법별 안전점검의 기준 및 실시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 3. 14., 2013. 3. 24., 2023. 4. 12.>

제65조(컨테이너의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8. 5. 1., 2018. 11. 20., 2023. 4. 12., 2023. 7. 11.>

1. 회사의 연혁·조직 및 업무분장 등 회사의 개요를 설명하는 서류
2.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 부속서 I 제2규칙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이하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컨테이너 안전점검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증 사본

4. 승인받은 안전점검방법 중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서류(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4조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 승인·변경승인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발급해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8. 5. 1., 2023. 7. 11.>

제65조의2(컨테이너의 안전점검방법의 재검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소유자가 안전점검방법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0년이 되는 해에 승인을 받은 안전점검방법이 제64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11.]

제65조의3(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7호의2서식의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별표 29의2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컨테이너 안전점검 설명서

가. 컨테이너 안전점검 설비 사용설명서

나. 컨테이너 치수 등 계측장비 사용설명서

다. 중대한 결함 등이 발견되었을 때의 조치절차 등 안전점검 절차 및 방법

라. 책임점검자의 임명 요건 및 절차

②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은 별표 29의2와 같다.

③ 법 제24조의2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장 주소(지방사무소의 주소를 포함한다)

4. 책임점검자의 성명

④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7호의2서식의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사항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통해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67호의3서식의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11.]

제66조(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4조의2제5항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컨테이너 안전점검기준 및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해야 한다. 이 경우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를 방문하여 안전점검실시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7. 11.]

제66조의2(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취소 및 정지)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29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23. 7. 11.]

제67조(컨테이너의 안전조치)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5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컨테이너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소재를 모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컨테이너가 방치된 현장에 7일간 공고한 후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8. 5.

1., 2023. 7. 11.>

1. 컨테이너의 종류 및 화물의 내용
2. 컨테이너가 소재하는 위치
3. 제거일시
4. 제거방법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컨테이너 및 실린 화물을 처분하는 경우 법 제25조 제6항에 따른 공매를 하되, 공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8. 5. 1., 2020. 6. 17., 2023. 7. 11.>

1. 공매할 컨테이너 및 실린 화물의 종류 및 내용
2. 공매의 장소 및 일시
3. 입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8. 5. 1., 2023. 7. 11.>

제68조(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의 청구)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 납부 통지서에 따르되, 별지 제69호서식의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납부 고지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8. 5. 1., 2018. 11. 20., 2023. 7. 11.>

② 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납부 통지서를 받은 자는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납부 고지서에 명시된 고지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내야 한다.<개정 2018. 11. 20.>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컨테이너안전조치비용의 청구 및 수납사항을 별지 제70호서식의 컨테이너안전조치비용수납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8. 5. 1.>

제5장 선박시설의 기준 등

제69조(만재흡수선의 표시 등) 법 제2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2. 6. 26., 2013. 3. 24.>

1. 수중익선, 공기부양선, 수면비행선박 및 부유식 해상구조물(제3조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
2. 운송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유람 범선(帆船)
3.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선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예인·해양사고구조·준설 또는 측량에 사용되는 선박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임시항해검사증서를 발급받은 선박
5. 시운전을 위하여 항해하는 선박
6. 만재흡수선을 표시하는 것이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선박

제70조(선박길이의 산정방법)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박길이의 산정방법은 「선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9호에 따른다. <개정 2010. 11. 18., 2015. 7. 15.>

제71조(복원성기준 제외 선박)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09. 2. 13., 2013. 3. 24., 2015. 7. 15., 2018. 5. 1.>

1.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선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다음 각 목의 선박
가. 예인、해양사고구조、준설 또는 측량에 사용되는 선박
나. 부선
2. 여객선이 아니거나 카페리선이 아닌 선박으로서 호소、하천 및 항내의 수역에서만 항해하는 선박
3. 부유식 해상구조물(제3조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
4. 복원성 시험이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선박

제72조(무선설비의 설치) ① 법 제29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제외한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09. 2. 13., 2010. 11. 18., 2013. 3. 24., 2015. 7. 15.>

1.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
 2.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
 3. 호소、하천 및 항내의 수역에서만 항해하는 선박
 4.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도선으로서 출발항으로부터 도착항까지의 항해거리(경유지를 포함한다)가 2해리 이내인 선박
-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선박이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30과 같다.

제73조(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 대상선박) 법 제30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다만, 호소、하천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개정 2008. 3. 14., 2010. 6. 17., 2013. 3. 24., 2015. 7. 15.>

1. 총톤수 2톤 이상의 다음 각 목의 선박
가.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나.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 다만, 해가 뜨기 30분 전부터 해가 진 후 30분까지 사이에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평수구역만을 항해하는 항해예정시간이 2시간 미만인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2010. 11. 18.>
2. 여객선이 아닌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3. 여객선이 아닌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4.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총톤수 50톤 이상의 예선, 유조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

5. 삭제 <2010. 11. 18.>

제6장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제74조(항해용 간행물의 종류) 법 제32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도(海圖) 및 조석표(潮汐表) 등 항해용 간행물”이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가목에 따른 해도,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항해서지 중 조석표·등대표·항로지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항행통보를 말한다. <개정 2021. 2. 19.>

제75조(항해용 간행물의 비치) ① 제74조에 따른 승인된 전자해도를 선박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백업장치 또는 예비목적의 최신화된 해도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8., 2013. 3. 24.>

- ② 선박에 비치하는 항해용 간행물은 수로정보에 따른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 ③ 항해용 간행물의 요건 등은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④ 항해용 간행물은 선장이나 선원이 즉시 꺼내어 확인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17.]

제76조(하역설비의 확인)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하역설비에 대한 제한하중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은 별표 31과 같다.

제77조(하역설비의 확인신청)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1톤 이상의 화물의 하역에 사용되는 하역설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하중등의 확인을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제한하중등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20. 6. 17.>

1. 데릭(Derrick)장치 : 제한하중 및 제한각도
 2. 지브크레인(Jib Crane) : 제한하중 및 제한반지름
 3. 그 밖의 하역장치 : 제한하중
 4. 하역장치에 처음으로 사용되는 하역장구와 용접 등에 의하여 수리를 한 하역장구 : 제한하중
-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제한하중등확인서는 별지 제72호서식과 같다.
 - ③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제한하중등의 표시는 하역설비의 잘 보이는 곳에 금속제 판을 고정시키거나 용접 등 항구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78조(하역설비에 관한 검사의 기록)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검사기록부는 별지 제73호서식과 같다.

- ② 법 제35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1. 제한하중등확인서
2. 하역설비검사기록부
- ③ 선박소유자나 선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79조(화물정보의 제공)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화물의 종류 및 그 화물별로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5. 1.>

1. 일반화물과 화물유닛 또는 컨테이너에 의하여 운송되는 화물인 경우
 - 가. 화물명세
 - 나. 화물의 총중량(화물유닛 또는 컨테이너의 중량을 포함한다)
 - 다. 화물특성
2. 산적화물인 경우
 - 가. 제1호 각 목의 정보
 - 나. 화물의 적하계수(무게 1톤에 대하여 세제곱미터로 표시된 부피를 말한다) 및 짐 고르기 방법
 - 다. 선적 후 화물표면 경사각도를 포함한 화물 이동의 특성
 - 라. 응집되거나 액화될 수 있는 화물의 경우 화물 수분량 및 운송허용 수분값
3. 해를 입힐 수 있는 화학성질을 가진 산적화물인 경우
 - 가. 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의 정보
 - 나. 화학성질에 관한 정보

② 컨테이너에 실린 화물을 외국으로 운송하려는 화주는 법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화물의 총중량에 관한 정보를 검증하여야 한다.<신설 2018. 5. 1., 2020. 6. 17.>

1. 컨테이너에 화물을 실은 상태로 화물의 총중량을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계량기로 계측하는 방법
2. 컨테이너에 실린 화물 및 화물을 고정·보호하기 위한 장비 등과 컨테이너 자체의 중량을 각각 합산하는 방법(화주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화물의 총중량을 계산·관리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계를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물의 총중량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검증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8. 5. 1.>

[제목개정 2018. 5. 1.]

제80조(강화검사)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강화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2. 1. 3., 2013. 3. 24., 2018. 11. 20.>

② 법 제42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강화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

른다.<개정 2008. 3. 14., 2013. 3. 24.>

③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개정 2008. 3. 14., 2013. 3. 24.>

1. 선령 5년 미만의 선박

2. 제1호 외의 선박 중 총톤수 300톤 미만의 선박

④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는 선박검사증서의 뒤 쪽에 검사사항 및 선박검사관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제81조(예인선항해검사)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는 예인선이 부선과 구조물 등을 예인하기 위하여 갖추어 둔 예인설비 등에 대하여 1년마다 예인선항해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 전후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압항부선과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인선과 평수구역에서만 운항하는 예인선의 경우에는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17.>

② 제1항에 따른 예인설비의 비치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은 별표 3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의 유효기간 기산방법은 영 제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기산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는 “예인선항해검사”로, “선박검사증서”는 “예인선항해검사증서”로 본다.

④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으려는 예인선의 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2. 1. 3., 2013. 3. 24., 2018. 11. 20.>

⑤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는 별지 제76호서식과 같다.

제82조(선박검사증서 등의 재발급 등) ①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건조(별도건조)검사증서,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제21조제9항에 따른 임시변경증, 제22조제3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 제32조제5항에 따른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서,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승인서, 제36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 제38조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제39조제2항에 따른 승인서,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지정서, 제44조제3항에 따른 검정증서, 제48조제2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지정서, 제50조제3항에 따른 확인서, 제54조제5항에 따른 팽창식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예비검사증서, 제56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 제57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 제58조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제59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증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컨테이너안전승인판, 제65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 승인·변경승인서, 제65조의3제5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증, 제77조제2항에 따른 제한하중등확인서 등, 제78조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검사기록부 및 제81조제5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이하 이 조에서 “증서”라 한다)를 잃어버리거나 증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증서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5. 7. 15., 2018. 5. 1., 2018. 11. 20., 2020. 6. 17., 2023. 7. 11.>

1. 잃어버린 경우 : 사유서

2. 헛어 못쓰게 된 경우 : 해당 증서

② 제1항의 증서 중 주소나 선명의 변경 등 경미한 변경사유가 있어 증서를 다시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증서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증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한 후에 증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증서를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제7장 검사업무의 대행 등

제83조(협정의 체결신청)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정을 체결하려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별지 제78호서식의 협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1.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임원의 성명
3. 선박검사원의 수
4. 정관 및 예산
5. 등록된 선박의 수 및 검사기준
6. 수수료의 기준
7. 검사등업무의 대행계획서
8.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84조(협정기간의 연장)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협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협정기간의 종료일 전 90일까지 별지 제78호서식의 협정신청서에 제83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협정체결 당시와 달라진 내용이 없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제85조(대행업무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단 및 선급법인의 대행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33과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횡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 3. 14., 2013. 3. 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행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3. 3. 24.>

제86조(지도·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공단 및 선급법인의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등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 지도·감독 외에 수시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및 선급법인에게 개선·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5. 1.]

제87조(검사신청 서식)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간검사,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중간검사시기의 연기,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면의 승인 및 변경승인,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법 제18조제9항에 따른 검정,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제한하중등의 확인,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강화검사 및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를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신청하는 경우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4조제2항, 제44조제1항, 제54조제1항, 제77조제1항, 제80조제1항 및 제8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의 서식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17.]

제87조의2(전자증서의 발급)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건조(별도건조)검사증서,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제21조제9항에 따른 임시변경증, 제22조제3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면제증서·국제만재흘수선면제증서,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승인서, 제44조제3항에 따른 검정증서, 제50조제3항에 따른 확인서, 제54조제7항에 따른 예비검사증서, 제58조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제59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증서, 제77조제2항에 따른 제한하중등확인서 및 제81조제5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2.>

[본조신설 2020. 6. 17.]

제88조(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대행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이하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5와 같다. <개정 2020. 6. 1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 3. 14., 2013. 3. 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행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3. 3. 24.>

제88조의2(지도·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업무 대행과 관련하여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에 개선·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17.]

제89조(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대행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하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개정 2020. 6. 1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 3. 14., 2013. 3. 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행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3. 3. 24.>

제89조의2(지도·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운송 및 저장 등에 관한 검사 및 승인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에 개선·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17.]

제8장 항만국통제

제90조(항만국통제에 따른 조치 등)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만국통제점검보고서는 별지 제7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7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란 팩스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말한다.<개정 2008. 3. 14., 2013. 3. 24., 2020. 6. 17.>

제91조(특별점검) ① 법 제6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점검대상선박 및 점검시기 등을 선박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 제69조제3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개정 2008. 3. 14., 2013. 3. 24.>

1. 최근 3년 이내에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인하여 출항이 정지된 선박
2. 최근 3년간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인하여 소속 선박의 출항정지율이 대한민국 선박의 평균 출항정지율을 초과하는 선박소유자의 선박
3. 그 밖에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인하여 출항정지율이 특별히 높은 선박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선박소유자에게 항해정지명령 또는 시정·보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3. 3. 24.>

1. 항해정지명령서 : 별지 제80호서식
2. 시정·보완명령서 : 별지 제81호서식

제9장 특별검사 등

제92조(특별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선박의 구조·설비 등으로 인하여 대형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유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여 검사대상으로 공고한 선박에 대하여 특별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8. 5. 1.>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사대상 선박의 범위
2. 검사사항
3. 검사기간
4. 검사준비사항
5. 그 밖에 특별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특별검사의 대상이 된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8. 11. 20.>

1. 선박검사증서
2. 제2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된 특별검사에 관련되는 서류 또는 도면

④ 영 제19조에 따른 항해정지명령서 또는 시정·보완명령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해정지명령서 : 별지 제82호서식

2. 시정·보완명령서 : 별지 제83호서식

제93조(재검사 등)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재검사·재검정 및 재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재검사(재검정, 재확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0. 11. 18., 2018. 5. 1., 2018. 11. 20.>

② 삭제 <2017. 1. 2.>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재검사·재검정 및 재확인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7. 1. 2., 2018. 5. 1.>

제10장 보칙

제94조(선급법인의 선박검사) 법 제73조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시설”이란 제4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제95조(선박의 결함신고)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85호서식의 선박결함신고서에 따르며,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을 통하여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선박의 결함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내용을 별지 제86호서식의 선박결함신고기록부에 적고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8. 5. 1.>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박의 결함신고를 한 자의 신원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제87호서식의 선박결함신고자명부에 적어 보안업무 관련 규정에 따라 대외비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8. 5. 1., 2020. 6. 17.>

④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출항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박소유자에게 별지 제88호서식의 출항정지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6조(항해정지명령 등의 서식) 영 제20조에 따른 항해정지명령서 또는 시정·보완명령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해정지명령서 : 별지 제89호서식
2. 시정·보완명령서 : 별지 제90호서식

제97조(선박검사관의 자격 등) ① 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은 선체검사관 및 기관검사관으로 구분하며 검사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 3., 2017. 10. 10., 2020. 6. 17., 2022. 6. 14., 2023. 7. 11.>

1. 선체검사관
 -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항해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2) 3급 항해사(항해사면허가 한정면허인 경우에는 상선에 한정된 면허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승선경력을 산정할 때에는 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사람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1) 대학이나 해양·수산 계열의 전문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2) 2급 항해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사람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1)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선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선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선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1)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2) 2급 항해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기관검사관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1) 대학에서 기관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2) 3급 기관사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1) 대학이나 해양·수산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2) 2급 기관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사람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계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또는 조선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반기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2급 기관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검사관은 7급 이상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임명한다.<개정 2008. 3. 14., 2013. 3. 24.>

③ 제1항에 따른 선체검사관 및 기관검사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체검사관 : 선박의 선체와 이에 부수되는 선박시설 및 선박용물건의 검사

2. 기관검사관 : 선박의 기관과 이에 부수되는 선박시설 및 선박용물건의 검사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의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검사관과 제6항에 따른 항만국통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관이 선박[여객선 및 특수선(수중익선, 원자력선, 잠수선, 공기부양선, 그 밖에 특수한 구조로 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을 말한다)은 제외한다]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선체검사관은 기관검사관의 직무를, 기관검사관은 선체검사관의 직무를 각각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검사관이 1년 이상 3년 미만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소형선박 및 선박용물건의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적용한다.<개정 2010. 6. 17., 2013. 3. 24.>

⑤ 제2항에 따라 임명되어 업무를 하는 검사관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시행하는 5일 이상의 신규 검사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새로운 전문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위하여 2년마다 5일 이상의 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3. 3. 24.>

⑥ 법 제76조제4호에 따른 항만국통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관(이하 “항만국통제검사관”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3. 3. 24.>

제97조의2(선박검사원의 자격) ①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은 선체검사원, 기관검사원 및 전문검사원으로 구분하며 검사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관련 국제기구 및 국내외 전문기관 등에서 실무교육을 받은 기간 중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관련 분야의 경력 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5., 2017. 1. 2., 2017. 10. 10., 2018. 5. 1., 2018. 11. 20., 2020. 6. 17.>

1. 선체검사원

- 가. 대학의 해양계·수산계·조선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전문대학의 해양계·수산계·조선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다.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해양계·수산계·조선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1년 이상의 대행 검사기관의 수습 경력이 있는 사람
- 라. 선박검사관으로서 경력이 있는 사람
-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3급항해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선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선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선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기관(機關)검사원

- 가. 대학의 기관·기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전문대학의 기관·기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다.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기관·기계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1년 이상의 대행검사기관의 수습 경력이 있는 사람
- 라. 선박검사관으로서 경력이 있는 사람
-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3급기관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계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또는 조선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반기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검사원

- 가.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금속, 전기·전자, 통신, 생물, 환경, 화학, 화공, 물리 또는 해양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의 관련 학과를 졸업하였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경우:
2년 이상

2) 전문대학의 관련 학과를 졸업하였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경우:
4년 이상

나.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금속, 전기·전자, 통신, 생물, 환경, 화학, 화공, 물리 또는 해양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1년 이상 대항 검사기관의 수습 경력이 있는 사람

② 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외국에서 선박검사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선박검사업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제선급연합회의 정회원인 선급 검사원

2. 제1항에 따른 검사원 자격이 있는 사람

③ 공단 및 선급법인은 검사원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임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체검사원, 기관검사원 및 전문검사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7. 15.>

1. 선체검사원: 선박의 선체와 이에 부수되는 선박시설 및 선박용물건의 검사

2. 기관검사원: 선박의 기관과 이에 부수되는 선박시설 및 선박용물건의 검사

3. 전문검사원: 선박의 금속분야, 전기·전자, 통신, 생물, 환경, 화학, 화공, 물리 또는 해양학 분야에 관한 시설, 이와 관련된 선박용물건, 해양오염방지설비 및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검사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의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검사원이 선박[여객선 및 특수선(수중익선, 원자력선, 잠수선, 공기부양선, 그 밖에 특수한 구조로 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을 말한다)은 제외한다]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선체검사원은 기관검사원의 직무를, 기관검사원은 선체검사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검사원이 1년 이상 3년 미만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소형선박 및 선박용물건의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적용한다.<개정 2013. 3. 24.>

⑥ 제4항제3호에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5년 이상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검사원 중 금속에 관련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선체검사원의 직무를, 전기·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기관검사원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전문검사원은 대항검사기관이 따로 정하는 해당분야의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4.>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원은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시행하는 5일 이상의 신규 검사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새로운 전문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위하여 대항검사기관이 따로 정하는 해당 분야의 직무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0. 6. 17.]

제97조의3(위험물검사원의 자격기준 및 직무) ① 법 제77조의2에 따른 위험물검사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검

사등대행기관에서 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 8. 25.>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에서 항해·기관·선박운항, 화학 또는 화공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선박직원법」에 따른 3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 분야 또는 위험물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법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험물검사원의 실무수습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 8. 25.>

1.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실무수습 1개월 이상
2.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5년 미만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실무수습 2개월 이상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실무수습 3개월 이상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 인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항해, 기관, 또는 선박운항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총톤수 500톤 이상인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서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 또는 배수톤수 200톤 이상인 함정에서 항해 또는 기관운전에 관한 부서장 이상의 직위로 근무한 경력
2. 제1항제1호(화학 또는 화공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화학·화공 관련 제조업체의 제품 제조·연구·실험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화학·화공 분야 교육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경력
3.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선박안전법」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 근무한 경력
4.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양수산부장관이 자격을 인정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④ 위험물검사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물 적재검사
2. 위험물 컨테이너 수납검사
3. 위험물 용기·포장검사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무

[본조신설 2019. 11. 20.]

제98조(청문) 법 제78조에 따른 청문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99조(항만국통제 수수료)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항만국통제에 따른 결함의 시정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수수료는 별표 37과 같다.

제100조(특별점검 수수료) ① 법 제80조제6항의 수수료는 특별점검을 위하여 발생한 항공료, 숙박비, 식비 및 현지 교통비 등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무원여비규정」의 지급기준보다 초과 지출된 숙박비는 실비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및 관리는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보관금 취급규칙」을 준용한다.

제101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6., 2023. 7. 11., 2026. 7. 13.>

1. 제47조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 및 설비기준: 2017년 1월 1일
 2. 삭제 <2026. 7. 13.>
 3. 제65조의3제2항 및 별표 29의2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인력, 시설 및 설비 등 기준: 2023년 7월 1일
 4. 삭제 <2026. 7. 13.>
 5. 삭제 <2020. 4. 6.>
 6. 삭제 <2026. 7. 13.>
- [전문개정 2017. 1. 2.]

부칙 <제390호, 2007. 11. 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 「선박검사관의자격에관한규칙」, 「선박검사원자격등에관한규칙」, 「선박또는선박용물건의우수사업장인정등에관한규칙」, 「선박또는선박용물건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의한 증서에 관한 규칙」, 「안전한컨테이너를위한국제협약에의한컨테이너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 (선체두께의 측정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 제53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취소 또는 효력정지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대상 선박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9. 7. 1.>

1. 2008년 7월 1일 : 제73조제3호, 제4호(총톤수 150톤 미만) 및 제5호의 선박
2. 2009년 7월 1일 : 제73조제1호나목(총톤수 150톤 미만)의 선박
- 2의2. 2010년 7월 1일 : 제73조제1호다목의 선박
3. 공포한 날 : 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 외의 선박

제6조 (강화검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강화검사를 받아야 하는 선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정기검사 나 제1종 중간검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아야 하는 선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정기검사나 중간검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9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점검을 받아야 하는 선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적용받게 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 이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 (부유식 해상구조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박검사 등을 받아 온 제3조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유식 해상구조물은 이 규칙에 따라

선박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계선기간 등의 서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계선 중인 선박에 대한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계선기간 등의 서류 제출은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건조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검사가 면제된 선박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계도서의 심사가 면제된 선박은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를 받는 경우와 선박을 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15.>

제11조 (별도건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용기관에 대하여는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별도건조검사 사항 중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라 별도건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도입 전 해당 외국정부등이 실시한 검사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
2. 제작 및 거치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관

제12조 (도면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추가적용선박이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도면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 (선박검사증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제조검사합격증명서·선박검사증서·임시변경증·임시항행검사증·국제협약검사증서·선박구조등변경허가서·선박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승인서·국제협약증서유효기간연장승인서·형식승인증서·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검정합격증명서·우수사업장지정서·확인서·팽창식

구명설비정비시설등확인서, 예비검사합격증명서, 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컨테이너검정증서, 컨테이너형식승인판, 컨테이너정기(계속)점검방법승인서, 제한하중등지정서 및 하역설비검사기록부는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조검사합격증명서”는 “건조검사증서”로, “임시항행검사증”은 “임시항해검사증서”로, “형식승인시험합격증명서”는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로, “검정합격증명서”는 “검정증서”로, “예비검사합격증명서”는 “예비검사증서”로,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합격증명서”는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로, “컨테이너검정합격증명서”는 “컨테이너검정증서”로, “하역장치제한하중등지정서”는 “제한하중등지정서”로 본다.

제14조 (소형선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형선박이 이 규칙의 시행으로 소형선박이 아닌 선박으로 된 경우 적용되는 선박시설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선박의 길이, 너비 또는 깊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중간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중간검사를 받아야 할 선박이 이 규칙의 시행으로 중간검사의 종류가 변경된 선박은 이 규칙에 따라 중간검사의 종류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6조 (우수사업장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된 기관은 제47조 및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7조 (예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예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박길이가 12미터 이상 24미터 미만인 특수재질선박으로 선체에 관한 예비검사를 신청한 선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제6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9조 (강화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강화된 검사(ESP)를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강화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0조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협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장관과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검사등업무와 관련하여 체결한 협정은 이 규칙에 따라 체결한 협정으로 본다.

제21조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정기관 또는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 규칙에 따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또는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2조 (선박검사관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박검사관 또는 선박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자는 각각 이 규칙에 따른 선박검사관 또는 선박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2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선박안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을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으로 한다.

② 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선박안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을 “「선박안전법」 제29조에 따른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선박안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선박안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선박안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선박안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선박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로 한다.

③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검사협회"라 한다) 또는 동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급법인 ”을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검사협회 ”를 “공단 ”으로 한다.

④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안전기술원 또는 동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급법인 ”을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으로 한다.

⑤ 선박톤수의측정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선박안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을 “「선박안전법」 제27조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다목 중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행상의 ”를 “항해에 관한 ”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안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선박안전법」 제27조에 따른 ”으로 한다.

⑥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을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으로,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45조제3항 중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 동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급법인 ”을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으로 한다.

제53조제3항 중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 ”으로 한다.

⑦ 어선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장소”를 “검사장소”로 한다.

제32조제2호 단서 중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선박안전법」 제6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로,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검사협회"라 한다)”를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검사협회”를 각각 “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선박검사원자격등에관한규칙에 의한 검사원”을 “「선박안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 한다.

제75조제1항·제3항 및 제76조 중 “검사협회”를 각각 “공단”으로 한다.

⑧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제2호 중 “「선박안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을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으로 한다.

⑨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제2호 중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증서의 재교부신청서”를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에 따른 증서재발급신청서”로 한다.

⑩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나목 중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을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으로 한다.

⑪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선박안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 또는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급법인”을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으로 한다.

⑫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6제1호 중 “「선박안전법」 제5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검사를 받거나 동법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검사를 받거나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으로 한다.

⑬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단서 중 “「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10호에 따른 ”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으로 한다.

1.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제69조 중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 제16조, 제23조, 제24조,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45조”로 한다.

⑭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2호”를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으로 한다.

제2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호, 2008. 3. 14.>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호, 2008. 12. 31.>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별지 제50호서식 뒤쪽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⑩ 부터 2@ 까지 생략

부칙 <제100호, 2009. 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호, 2009. 7. 1.>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비고란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0호,2010. 2.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호,2010. 6.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4호 및 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국제노동기구 해사노동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에 관한 별표 6 제4호 및 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국제노동기구 해사노동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 이후에 건조계약을 체결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2호,2010.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검사의 준비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선박검사를 실시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2호,2010. 11.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호,2011. 4. 1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9호,2012. 1.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대승선인원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제2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후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465호, 2012. 5. 18.> (선원법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4호 표 외의 부분 중 “「선원법」 제3조제5호”를 “「선원법」 제2조제6호”로 하고, 같은 호 비고란 제1호 중 “「선원법」 제3조제5호”를 “「선원법」 제2조제6호”로 하며, 같은 표 제4호의2 중 “「선원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를 “「선원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482호, 2012. 6. 26.>**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우수사업장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그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별지 제48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1호, 2013. 3. 24.>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제3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 제6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4조, 제7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6조제1항, 제90조제2항, 제9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4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0호, 제6조제5호,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10호 전단·후단, 제2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1항제5호, 제31조제7항,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1조제1항·제2항,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5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5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45조의4제1항·제2항, 제46조제2항 전단,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1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제2항,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2조제1항·제2항, 제64조제2항, 제69조제6호, 제71조제4호, 제75조제1항,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제1항·제2항, 제81조제4항,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4조 본문·단서, 제8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6조제2항, 제8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91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7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97조의2제3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본문, 별표 6 제9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 별표 8 제1호, 별표 9 제1호나목, 별표 10 제1호파목, 별표 15 제2호가목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 같은 목 1)가), 같은 표 제3호바목4), 별표 16 제2호가목, 별표 20 제2호나목3)가), 별표 24 제2호가목, 같은 표 제4호, 별표 25 제1호, 별표 26 제10호, 별표 27 제2호가목, 별표 31 제2호가목 시험하중란, 별표 32 제2호가목1), 별표 34 위반행위란 제4호, 별표 35 위반행위란 제4호, 별표 36 위반행위란 제4호,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30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제출하는 곳란,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제출하는 곳란, 별지 제50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53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63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67호서식, 별지 제72호서식, 별지 제78호서식 뒤쪽 제출하는 곳란 및 유의사항란, 별지 제80호서식부터 별지 제83호서식까지, 별지 제88호서식, 별지 제89호서식 및 별지 제90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및 제9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3면·10면,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2면·7면, 별지 제13호서식 2면, 별지 제14호서식 3면·10면, 별지 제14호의2서식 3면·11면,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1 및 별지 2 외의 부분, 같은 서식 별지 1 및 별지 2,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1 및 별지 2 외의 부분, 같은 서식 별지 1 및 별지 2, 별지 제18호서식 제3쪽·제7쪽·제8쪽,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1 및 별지 2 외의 부분, 같은 서식 별지 1 및 별지 2,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9호서식까지,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64호서식 및 별지 제76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별지 제79호서식 FORM A 중 “(reporting authority)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REPUBLIC OF KOREA”를 “(reporting authority)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로, “(address) 104 - 2, Gye - dong, Jongno - gu, Seoul 110 - 793, Republic of Korea”를 “(address)”로, “(telephone) +82 - 2 - 3674 - 6323”을 “(telephone)”으로, “(telefax) +82 - 2 - 3674 - 6327”을 “(telefax)”로, “(e - mail address) psc@momaf.go.kr”를 “(e - mail address)”로, “issuing office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를 “issuing office”로 하고, 같은 서식 FORM B 중 “(reporting authority)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를 “(reporting authority)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로, “(address) 104 - 2, Gye - dong, Jongno - gu, Seoul 110 - 793, Republic of Korea”를 “(address)”로, “(telephone) +82 - 2 - 3674 - 6323”을 “(telephone)”으로, “(telefax) +82 - 2 - 3674 - 6327”를 “(telefax)”로, “(e - mail address) psc@momaf.go.kr”를 “(e - mail address)”로 한다.

⑮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63호,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호, 2014. 12. 31.> (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호, 2015. 7. 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박시설의 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선박의 길이·너비·깊이·용도의 변경 또는 설비의 개조를 위하여 선박시설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7호, 2017. 1. 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61호, 2017. 10. 10.>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해양수산부령 일부 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호, 2018. 5.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호, 2018. 9.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5조 및 별표 7 제1호라목1)의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호, 2018. 11.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6호, 2019. 8.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선박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②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구비서류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제3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제2쪽 및 제3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각각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21호의3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4서식 제1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하고, 같은 서식 제4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8쪽 중 제3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하고, 같은 서식 8쪽 중 제7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하며, 같은 서식 8쪽 중 제8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제2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하고, 같은 서식 제6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8쪽 중 제3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하고, 같은 서식 8쪽 중 제7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하며, 같은 서식 8쪽 중 제8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21쪽 중 제2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하고, 같은 서식 21쪽 중 제10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하며, 같은 서식 21쪽 중 제21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제2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9쪽 중 제1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하고, 같은 서식 9쪽 중 제9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제1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하고, 같은 서식 제4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③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같은 법”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박안전법」”으로 한다.

④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항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같은 법”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박안전법」”으로 한다.

제58조의6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선박안전법」 제76조 및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또는 선박검사원으로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종전의 「선박안전법」(2018년 12월 31일 법률 제1616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⑤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호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47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51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58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59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61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62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63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64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65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66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67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68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69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70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7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71호의2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수수료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76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유의사항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⑥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3항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⑦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1호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374호, 2019. 1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2조 중 “선임인가 및 자격”을 “선임인가”로 한다.

부칙 <제402호, 2020. 4. 6.>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5호, 2020. 6.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9호, 제87조 및 제8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0호, 2020. 7. 30.> (항만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9호의2 중 “ 「항만법 시행령」 제25조의3 ”을 “ 「항만법 시행령」 제42조 ”로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 「항만법」 제29조의3제1항 ”을 “ 「항만법」 제39조제1항 ”으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466호, 2021. 2. 19.>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2조에서 “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도(海圖) 및 조석표(潮汐表) 등 항해용 간행물 ”이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가목에 따른 해도, 같은 호 다목에 따른 항해서지 중 조석표·등대표·항로지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항행통보를 말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486호, 2021. 6. 3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9호, 2022. 1. 20.>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1호, 2022. 6.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9호,2023. 4.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 준비사항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1 제1호나목5)나)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중간검사를 실시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5 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02호,2023. 4. 25.>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615호,2023. 7.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컨테이너의 안전점검방법의 승인·변경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부터 1개월 내에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 승인·변경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제6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725호,2025. 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4호,2025. 12. 26.>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7호,2026. 7. 13.>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0호,2026. 7. 27.> (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3호,2026. 8.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6. 30.>

별도건조검사(제11조제2항 관련)

1. 선체

- 가. 입거(入渠)되거나 상가(上架)된 상태에서 선체의 두께를 측정하고 압력시험을 실시한다.
- 나. 압력시험은 수압시험이나 기밀시험의 방법으로 하고, 다음에 따라 확인한다.
- 1) 압력시험의 범위는 강력갑판 아래의 선체, 선루 또는 상갑판 위의 첫째 갑판실로 하며 반드시 선박검사관(대행검사기관이 대행하는 경우 선박검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입회하여야 한다.
 - 2) 물높이나 압력을 확인하고, 물이나 공기가 새지 아니하는지 확인한다.
 - 3) 압력이 걸린 상태에서 부재(部材)가 변형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 후 보강한다.
 - 4) 선체 각 부에 대한 수압시험은 다음의 방법으로 한다.

항 목	수압시험의 기준
이중저	정판부터 공기관 상단까지 물높이에 따른 압력과 정판부터 격벽갑판까지의 물높이에 따른 압력 중에 큰 것에 상당하는 압력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 외의 선박의 선수창(물탱크나 유탱크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만재흡수선까지의 물높이에 따른 압력과 선수 격벽의 높이의 3분의 2까지의 물높이에 따른 압력 중 큰 것에 상당하는 압력. 다만, 그 수선 이상의 부분은 호스 내의 압력이 2bar [2 kgf/cm ²]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의 선수창	한계선까지의 압력 정도의 압력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의 수밀 격벽(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칸막이벽)의 수밀문(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문)	호스 내의 압력이 2 bar [2 kgf/cm ²]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외의 선박의 수밀 격벽의 수밀문	호스 내의 압력이 2 bar [2 kgf/cm ²]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선미창(물탱크나 유탱크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선미관구획실	만재흡수선까지의 물높이에 따른 압력에 상당하는 압력. 다만, 만재흡수선 이상의 부분은 호스 내의 압력이 2 bar [2 kgf/cm ²]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물탱크나 유탱크로 사용하는 선수창 또는 선미창	정판부터 다음 위치까지의 물높이에 따른 압력 중 가장 큰 것에 상당하는 압력 가) 넘침관의 상단 나) 만재흡수선 다) 선박 깊이의 상부기점으로부터 정판까지의 수직 거리의 3분의 2를 정판부터
디프탱크	
법제처	74

	상방으로 수직으로 측정한 높이
측로	호스 내의 압력이 2 bar [2 kgf/cm ²]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그 밖의 수밀통로(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는 통로)	
제1급 폐쇄장치를 설치한 선루단격벽의 출입구	
수밀폐쇄장치(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는 폐쇄장치)를 갖춘 갑판구(창구를 포함한다)	
현문, 재화문 및 현창	
유조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의 화물 유 탱크	정판부터 창구 정부까지의 물높이에 따른 압력에 상당하는 압력
펌프실과 겸용하지 아니하는 코퍼댐	정판부터 창구 정부까지의 물높이에 따른 압력에 상당하는 압력
펌프실과 겸용하는 코퍼댐	호스 내 압력 2 bar [2 kgf/cm ²] 이상의 사수 압력
위험물 외의 가연성 액체를 운송하는 액체화학품산적운송선 및 액화가스물질운송선의 탱크	정판부터 창구 정부까지의 물높이에 따른 압력에 상당하는 압력

5) 4)에 따른 수압시험 대신에 다음의 기밀시험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선박마다 기밀시험을 희망하는 부위, 시험압력, 시험방법, 사용할 압력계의 종류, 검사예정일자 등을 기재한 기밀시험방안서를 받아 사전 검토 후 실시하고, 현장 입회시 성적이 불량하거나 사전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4)에 따른 수압시험을 실시한다.

가) 기밀시험의 압력은 0.2bar[0.2kgf/cm²]로 한다.

나) 시험압력은 U자형 게이지나 2개의 원형지시압력계로 확인한다.

다) 누설개소의 압력은 검지액(檢知液)을 발라 확인한다.

라) 현장 입회 전에 조선소로 하여금 사전확인을 충분히 하게 하고 누설개소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게 한다.

다. 타를 들어 올리거나 빼낸 상태에서 베어링 간극을 확인한다.

라. 수밀문·방화문 등 폐쇄장치의 효력시험

2. 기관

가. 내연기관은 전부 개방된 상태를 확인한다.

나. 프로펠러축계를 빼내어 축지름 측정, 비파괴시험 및 축과 지면재와의 틈을 확인한다.

다. 보일러와 압력용기는 개방된 상태를 확인한다.

라. 보조기관은 개방된 상태를 확인한다.

마. 보기의 개방된 상태와 관장치의 내부를 확인한다.

3. 배수설비

가. 펌프 등 배수설비의 개방된 상태를 확인한다.

나. 최고항해흘수선 이하에서 배 밖으로 통하는 밸브 및 콕의 개방상태를 확인

한다.

다. 효력시험을 실시한다.

4. 조타, 계선 및 양묘설비

가. 닻·닻쇠사슬 또는 로프와 계선용 로프를 진열된 상태에서 치수를 확인한다.

나. 효력시험을 실시한다.

5. 전기설비

절연저항시험과 효력시험을 실시한다.

6. 만재흡수선(해당 선박만 검사한다)

만재흡수선 지정요건을 확인하고 표시상태를 확인한다.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

만재흡수선의 종류별로 적용되는 대역 또는 구역, 계절기간 또는 기간 및
이에 대응하는 건현
 (제14조제1항제1호 관련)

만재흡수선의 종류	적용되는 대역 또는 구역	적용되는 계절기간 또는 기 간	건 현
하기 만재흡수선	하기대역	연중	하기 건현
	북대서양동기계절대역 I 북대서양동기계절대역 II 북대서양동기계절구역 북태평양동기계절구역 남부동기계절대역 계절열대구역 및 선박길이가 100미터 이하인 선박에 적용되는 동기계절구역	하기	
동기 만재흡수선	북대서양동기계절대역 II(서경 15도의 자오선과 서경 50도의 자오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해면은 제외한다), 북대서양동기계절구역, 북태평양동기계절대역, 남부동기계절대역 및 선박길이가 100미터 이하인 선박에 적용하는 동기계절구역	동기	동기 건현
동기 북대서양 만재흡수선	북대서양동기계절대역 I 및 북대서양 동기계절대역 II(서경 15도의 자오선과 서경 50도의 자오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해면으로 한정한다)	동기	동기 북대서양 건현
열대 만재흡수선	열대대역	연중	열대 건현
	계절열대구역	열대	
하기담수 만재흡수선	하기 만재흡수선란에 적혀 있는 대역 또는 구역에서 비중이 1.000인 수면	하기 만재흡수선란에 따른 기간	하기담수 건현
열대담수 만재흡수선	열대 만재흡수선란에 적혀 있는 대역 또는 구역에서 비중이 1.000인 수면	열대 만재흡수선란에 따른 기간	열대담수 건현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3. 7. 11.>

대역 또는 구역별로 적용되는 해면 및 계절기간(제14조제1항제1호 관련)

대역 또는 구역의 명칭	해 면	계절기간
1. 북대서양 동기계절 대역 I	그린란드의 해안으로부터 북위 45도까지의 서경 50도의 자오선, 거기에서 서경 15도까지의 북위 45도의 위도선, 거기에서 북위 60도까지의 서경 15도의 자오선, 거기에서 그리니치자오선까지의 북위 60도의 위도선 및 거기에서 북쪽으로 그리니치자오선에 따라 둘러싸인 해면	동기 10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하기 4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2. 북대서양 동기계절 대역 II	미합중국 해안으로부터 북위 40도까지의 서경 68도30분의 자오선, 거기에서 북위 36도 서경 73도의 점까지의 항정선, 거기에서 서경 25도까지의 북위 36도의 위도선 및 거기부터 토리나나갑까지의 항정선에 따라 둘러싸인 해면, 북대서양 동기계절대역 I, 북대서양 동기계절구역 및 스카케라크해협을 스코틀랜드를 통하는 위도선에 의하여 한정되는 발틱해를 제외한 해면	동기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기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 북대서양 동기계절 구역	미합중국 해안으로부터 북위 40도까지의 서경 68도30분의 자오선, 거기에서 캐나다 해안과 서경 61도의 자오선과의 교점 중 최남단까지의 항정선 및 캐나다와 미합중국의 동안에 따라 둘러싸인 해면	1. 선박길이 100미터를 넘는 선박 동기 12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하기 2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2. 선박길이 100미터 이하의 선박 동기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기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 북태평양 동기계절 대역	러시아 동안에서 사할린의 서안까지의 북위 50도의 위도선, 거기에 쿠릴리온 최남단까지의 사할린의 서안, 거기에서 홋카이도 와카나이까지의 항정선, 거기에서 동경 145도까지의 홋카이도의 동안 및 남안, 거기에서 북위 35도까지의	동기 10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하기 4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동경 145도의 자오선, 거기에서 서경 150도까지 북위 35도의 위도선 및 거기에서 알래스카 돌섬의 최남단까지의 항정선을 남쪽 한계로 하는 해면	
5. 남부동기 계절대역	미대륙 동안의 트레스 푼타스갑에서 남위 34도, 서경 50도의 점까지 항정선, 거기에서 동경 16도까지의 남위 34도의 위도선, 거기에서 남위 36도, 동경 20도의 점까지의 항정선, 거기에서 남위 34도, 동경 30도의 점까지의 항정선, 거기에서 항정선을 따라 남위 35도30분, 동경 118도의 점까지, 거기에서 타스마니아 북서안의 그림갑까지의 항정선, 거기에서 타스마니아 북안 및 동안을 따라 브루니도의 최남단까지, 스튜어트도의 블랙록포인트까지의 항정선, 거기에서 남위 47도, 동경 170도의 점까지의 항정선, 거기에서 남위 33도, 서경 170도의 점까지의 항정선 및 거기에서 남위 33도의 위도선을 따라 남위 33도 서경 70도 점까지, 거기에서 항정선을 따라 남위 41도 서경 75도 점까지, 거기에서 항정선을 따라 킬로에섬의 푼타 코로나 동대의 남위 41도 47분, 서경 73도 53분 지점까지, 거기에서 킬로에섬의 북쪽, 동쪽 및 남쪽 해안선을 따라 남위 43도 20분 서경 74도 20분 지점까지, 그리고 거기에서 서경 74도 20분 경도선을 따라 남위 45도 45분까지, 경도선 서경 74도 20분부터 동쪽으로 킬로에 수로의 내부지역을 포함한 해면	동기 4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하기 10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6. 열대대역	가. 미대륙 동안으로부터 서경 60도까지의 북위 13도의 위도선, 거기에서 북위 10도 서경 58도의 점까지의 항정선, 거기에서 서경 20도까지의 북위 10도의 위도선, 거기에서 북위 30도까지의 서경 20도의 자오선 및 거기에서 아프리카 서안까지의 북위 30도의 위도선, 아프리카 동안으로부터 동경 70도까지의 북위 8도의 위도선, 거기에서 북위 13도까지의 동경 70도의 자오선, 거기에서 인도 서안까지의 북위 13도의 위도선, 거기에서 인도 남안을 돌아 인도 동안의 북위 10도30분까지, 거기에서	

	북위 9도 동경 82도의 점까지의 항정선, 거기에서 북위 8도까지의 동경 82도의 자오선, 거기에서 말레이시아 서안까지의 북위 8도의 위도선, 거기에서 북위 10도의 베트남 동안까지의 아세아대륙의 동남 해안, 거기에서 동경 145도까지의 북위 10도의 위도선, 거기에서 북위 13도까지의 동경 145도의 자오선 및 거기에서 미대륙 서안까지의 북위 13도의 위도선을 북쪽 한계로 하고, 브라질 산토스항으로부터 서경 40도의 자오선과 남회귀선과의 교점까지의 항정선, 거기에서 아프리카 서안까지의 남회귀선과 아프리카의 동안으로부터 마다가스카르 서안까지의 남위 20도의 위도선, 거기에서 동경 50도까지의 마다가스카르 서안 및 북안, 거기에서 남위 10도까지의 동경 50도의 자오선, 거기에서 동경 98도까지의 남위 10도의 위도선, 거기에서 호주의 포트다윈까지 항정선, 거기에서 동쪽으로 웨셀섬까지의 호주 및 웨셀섬의 해안, 거기에서 요크갯의 서측까지의 남위 11도의 위도선, 요크갯의 동측에서 서경 150도까지의 남위 11도의 위도선, 거기에서 남위 26도 서경 75도의 점까지의 항정선, 거기에서 남위 32도47분, 서경 72도의 점까지의 항정선 및 거기에서 남미주 서안까지의 남위 32도47분의 위도선을 남쪽 한계로 하는 해면 나. 포트 사이드부터 동경 45도의 자오선까지의 수에즈운하, 홍해 및 아덴만 다. 동경 59도의 자오선까지의 페르시아만 라. 호주 동안의 그레이트배리아리프까지의 남위 22도의 위도선, 거기에서 남위 11도까지의 그레이트배리어리프에 따라 둘러 싸인 해면. 이 구역의 북방 한계는 열대대역의 남방 한계로 한다.	
7. 계절열대 구역	가. 다음 선에 따라 둘러싸인 북대서양. 북은 유카탄의 카토체갯으로부터 쿠바의 산 안토니오갯까지의 항정선, 거기에서 북위 20	열대 11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하기 7월 16일부터

도까지의 쿠바의 북안 및 거기서 서경 20도까지의 북위 20도의 위도선 서는 미대륙의 해안 남 및 동은 열대대역의 북쪽 한계 나. 다음 선에 따라 둘러싸인 아라비아해 서는 아프리카의 해안, 아덴만의 동경 45도의 자오선, 남아라비아의 해안 및 오만만의 동경 59도의 자오선 북 및 동은 파키스탄 및 인도의 해안 남은 열대대역의 북쪽 한계 다. 열대대역의 북쪽 한계 이북의 벵갈만 라. 다음 선에 따라 둘러싸인 남인도양 북 및 서는 열대대역의 남쪽한계 및 마다가스카르의 동안 남은 남위 20도의 위도선 동은 남위 20도 동경 50도의 점에서 남위 15도 동경 51도30분의 점까지의 항정선 및 거기에서 남위 10도까지의 동경 51도30분의 자오선 마. 다음 선에 따라 둘러싸인 남인도양 북은 열대대역의 남쪽 한계 동은 호주의 해안 남은 동경 51도30분에서 동경 114도까지의 남위 15도의 위도선 및 거기에서 호주의 해안까지의 동경 114도의 자오선 서는 동경 51도30분의 자오선 바. 다음 선에 따라 둘러싸인 지나해 서 및 북은 북위 10도부터 홍콩까지의 배트남 및 중국의 해안 동은 홍콩으로부터 수알항(루손섬)까지의 항정선과 북위 10도까지의 루손, 사마르 및 레이테 제도의 서안 남은 북위 10도의 위도선 사. 다음 선에 따라 둘러싸인 북태평양 북은 북위 25도의 위도선	10월 31일까지 열대 9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기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열대 1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하기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열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기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열대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기 1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열대 1월21일부터 4월30일까지 하기 5월 1일부터 1월20일까지 열대 4월 1일부터 10월31일까지
--	---

	서는 동경 160도의 자오선 남은 북위 13도의 위도선 동은 서경 130도의 자오선 아. 다음 선에 따라 둘러싸인 북태평양 북 및 동은 미대륙의 서안 서는 미대륙 해안에서 북위 33도까지의 서 경 123도의 자오선 및 북위 33도 서경 123 도의 점에서 북위 13도 서경 105도의 점까 지의 항정선 남은 북위 13도의 위도선 자. 남위 11도 이남의 카펜테리아만 차. 다음 선에 따라 둘러싸인 남태평양 북 및 동은 열대대역의 남쪽 한계 남은 호주의 동안에서 동경 154도에 이르는 남위 24도의 위도선, 거기에서 남회귀선까지 의 동경 154도의 자오선 및 거기에서 서경 150도까지의 남회귀선, 거기에서 남위 20도 까지의 서경 150도의 자오선 및 거기에서 열대대역의 남쪽 한계와의 교점까지의 남위 20도의 위도선 서는 열대대역에 포함된 그레이트배리어리 프 내측의 구역의 한계선 및 호주의 동안	하기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열대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기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2월 1일부터 2월 28(29)일까지 열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기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열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기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8. 선박길이 가 100미 터 이하인 선박에 적 용되는 동 기계절구 역	가. 다음의 선에 의하여 둘러 싸인 해면 북 및 서는 미합중국의 동안 동은 미합중국 해안으로부터 북위 40도까지 의 서경 68도30분의 자오선 및 거기에서 북 위 36도 서경 73도의 점까지의 항정선 남은 북위 36도의 위도선 나. 스카게락 해협의 스카우를 통하는 위도선에 따라 둘러싸인 발틱해 다. 북위 44도 이북의 흑해	동기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기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동기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기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동기 12월 1일부터 2월 28(29)일까지

	라. 다음 선에 따라 둘러싸인 지중해 북 및 서는 프랑스 및 스페인의 해안 및 스페인의 해안으로부터 북위 40도까지의 동경 3도의 자오선 남은 동경 3도에서 사르디니아 서안까지의 북위 40도의 위도선 동은 북위 40도부터 동경 9도까지의 사르디니아 서안 및 북안, 거기에서 코르시카 남안까지의 동경 9도의 자오선, 거기에서 동경 9도까지의 코르시카의 서안 및 북안, 거기에서 사시에갑까지의 항정선 마. 북위 50도의 위도선과 한국 동안의 북위 38도의 점으로부터 홋카이도 서안의 북위 43도 12분의 점까지의 항정선에 따라 둘러싸인 동해	하기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동기 1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하기 3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동기 12월 1일부터 2월 28(29)일까지 하기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9. 하기대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해면(선박 길이가 100미터를 넘는 선박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해면은 제외한다)이 아닌 해면	
비 고 : 1. 서틀랜드 제도는 북대서양 동기계절대역I 과 북대서양 동기계절대역II와의 한계선상에 있는 것으로 본다. 2. 호치민, 아덴 및 버베라는 열대대역과 계절열대구역과의 한계선상에 있는 것으로 본다. 3. 발파라이소 및 산토스는 열대대역과 하기대역과의 한계선상에 있는 것으로 본다. 4. 홍콩 및 수알은 계절열대구역과 하기대역과의 한계선상에 있는 것으로 본다. 5. 대역 또는 구역의 한계선상에 있는 항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선박이 해당 항을 도착할 때까지 항해한 대역이나 구역 또는 해당 항을 출항한 후 항해하려는 대역 또는 구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8. 11. 20.>

평수구역의 범위(제15조제2항 관련)

구 분	범 위
제1구	평안북도 철산군 수운도 동대부터 진방위 295도로 그은 선과 그 동대부터 어영도, 대화도, 정주군의 외순도를 지나 평안남도 안주군 태향산에 이르는 선 안
제2구	평안남도 용강군 연대봉으로부터 황해도 송화군 자매도 및 흑암을 지나 냉정말에 이르는 선 안
제3구	황해도 장연군 장산곶으로부터 월내도, 웅진군 마합도, 기린도 및 순위도를 지나 동산곶에 이르는 선 안
제4구	황해도 웅진군 독순항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웅진군 대연평도 북부 서단을 연결한 선, 대연평도 남단에서부터 서만도 북서단과 대초지도 남서단을 지나 덕적도 북단을 연결한 선과 덕적도 남서 끝단에서 문갑도 서단을 연결한 선 및 문갑도 남단에서 장안서 동대를 지나 충청남도 태안군 학암포를 연결하는 선 안
제5구	충청남도 태안군 몽산리 남단에서 외도 서단을 지나 보령시 삼시도 남서단과 죽도 서단을 연결한 선 안
제6구	충청남도 서천군 동백정갑으로부터 전라북도 군산시 방죽도(방축도) 동단을 지나 관리도(관지도) 북단을 연결한 선과 관리도 남단으로부터 부안군 수성단을 연결한 선 안
제7구, 제8구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천구부터 신안군 재원도 북단, 재원도 서단, 자은도 서단, 비금도 고서리 서단, 비금도 내월리 서단, 신도 남단 및 하태도 남단을 지나 전라남도 진도군 가사도 서단에 이르는 선, 가사도 남단에서부터 옥도 북단, 주도 북단, 관사도 서단, 소마도 서단을 지나 대마도 서북단을 연결하는 선, 대마도 남단에서 관매도 서단을 잇는 선, 관매도 동단에서 죽항도 동단을 지나 진도 남단의 서망 끝단에 이르는 선, 전라남도 진도군 접도 남단에서 무저도 남단을 지나 금호도 남단에 이르는 선, 금호도 남단에서 어룡도 서단, 넓도 남서단을 지나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도 서단에 이르는 선, 완도군 보길도 동단에서 소안도 서단을 연결하는 선, 소안도 북단에서 대모도 남단을 지나 청산도 서단을 연결하는 선, 청산도 북단에서 생일도 남단, 섭도 남단, 시산도 남단을 지나 고흥군 망지각에 이르는 선 안
제9구	전라남도 고흥군 외나로도 서단에서 진방위 330도로 고흥군 포두면 남성리 해안선에 이르는 선, 외나로도 동부 북단에서 여수시 금오도 서부 북단을 연결한 선, 금오도 동부 북단에서 돌산도 남단 거마각에 이르는 선, 돌산도 동부 중앙 방죽포에서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도 웅봉산 남단에 이르는 선, 남해도 장항말부터 통영시 하도 남단, 추도 서단 및 두미도 서단을 지나 육지도 서부 북단에 이르는 선, 육지도 동단에서 연화도 북단, 외부지도 남단을 지나 비진도 남단을 거쳐 거제도 망산각에 이르는 선, 거제도 북부 노장산 동단으로부터 북위 34도58.9분 동경 128도49.9분,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도 남단, 북위 35도11.2분 동경 129도14.5분을 지나 기장군 대변리 동남단에

	이르는 선 안
제10구	울산광역시 범월갑 방파제 내측(북위 35도25.9분 동경 129도22.3분)으로부터 북위 35도28.8분 동경 129도27.2분을 지나 미포항 북방파제 끝단(북위 35도31.6분 동경 129도27.2분)에 이르는 선 안
제11구	경상북도 포항시 술미부터 여남갑에 이르는 선 안
제12구	강원도 통천군 학룡단으로부터 함경남도 덕원군 여도를 지나 영흥군 호도 대강곶(남각)에 이르는 선 안
제13구	함경남도 정평군 광포강구부터 함흥시 외양도단에 이르는 선 안
제14구	함경남도 북청군 봉수대지부터 마양도를 지나 송도갑에 이르는 선 안
제15구	함경북도 성진군 송오리단으로부터 유진단에 이르는 선 안
제16구	함경북도 청진시 고말산단으로부터 진방위 263도로 그은 선 안
제17구	함경북도 나진시 송목단으로부터 대초도를 지나 이어단에 이르는 선 안
제18구	함경북도 나진시 꺾단으로부터 적도를 지나 오포단에 이르는 선 안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8. 11. 20.>

연해구역의 범위(제15조제3항 관련)

구 분	범 위
1	평안북도 용천군 압록강구부터 마안도를 지나 황해도 장연군 장산곶에 이르는 선 안
2	황해도 웅진군 동산곶으로부터 충청남도 서산군 서격렬비도 및 전라남도 신안군 홍도, 소흑산도를 지나 북위 33도30.2분 동경 125도49.9분을 잇는 선과 북위 33도30.2분 동경 127도19.9분, 북위 33도30.2분 동경 129도4.9분을 연결하는 선 및 북위 34도35.2분 동경 130도34.9분과 북위 35도14.1분 동경 129도44.4분을 연결하는 선 안
3	강원도 강릉시 사천진리 사천진단으로부터 북위 37도51.2분 동경 130도54.9분, 북위 37도31분 동경 132도7.9분, 북위 37도0.2분 동경 132도19.9분, 북위 36도14.2분 동경 129도59.9분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 안
4	강원도 고성군 수원단으로부터 함경북도 성진군 유진단에 이르는 선 안
5	북위 33도30.2분 동경 129도4.9분으로부터 일본국 규슈·시코쿠·혼슈·홋카이도의 각 해안으로부터 20마일 이내의 선을 연결하고 북위 34도35.2분 동경 130도34.9분에 이르는 선 안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5. 2. 27.>

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제18조제3항 관련)

1. 여객실 여객정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 가. 침대 1개에 대한 수용 인원은 1명[더블베드(길이 2.0미터 이상, 너비 1.3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의 경우는 2명]으로 한다.
- 나. 좌석의 수용 인원은 그 면적을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단위면적으로 나눈 수로 한다.

항해구역	항해예정시간	단위면적(제곱미터)	
		통로를 설비하는 여객실	통로를 설비하지 아니하는 여객실
근해 및 원양	-	0.85	1.00
연해 및 평수	24시간 이상	0.85	1.00
	6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0.75	0.85
	1.5시간 이상 6시간 미만	0.45	0.55
	1.5시간 미만	0.30	0.35

비 고

- "항해예정시간"이란 출발항에서 최종 도착항에 이르는 기항지의 정박시간을 포함한 총소요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단위면적은 3등여객정원 산정 시의 단위면적이며, 2등여객정원은 3등여객정원 산정시 단위면적의 5할을, 1등여객정원은 2등여객정원 산정시 단위면적의 5할을 각각 더한 단위면적으로 나눈 수를 그 인원수로 한다.
- 여객실의 높이가 2.0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 높이에 비례한 체감률을 적용하여 그 인원을 줄여야 한다.
- 특등실 및 1등실(침대를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은 1실에 대하여 침대2대(더블침대를 갖춘 경우에는 1대)를 초과하여 비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등실은 1실에 대하여 부속휴게실과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 칸막이가 있는 좌석은 좌석 구분마다 칸막이의 안 쪽을 측정한 면적에 따라 좌석의 수용수를 산정한다.

다. 의자석의 수용 인원은 그 정면너비를 다음 표에 따른 단위너비로 나눈 수로 하며 그 의자는 균등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항해예정시간	단위너비(센티미터)
6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50
1.5시간 이상 6시간 미만	45
1.5시간 미만	40

비 고

- 정면너비(b)는 그림 1과 같이 측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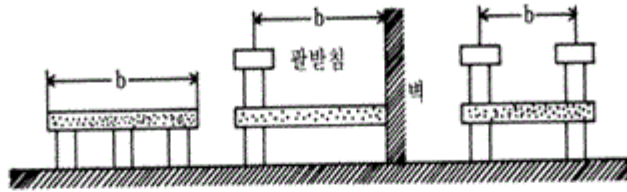


그림 1

2. 굴절 또는 굴곡된 긴 의자는 그림 2와 같이 절터졌는 부분과 등판 중 적은 둘레의 치수를 정면너비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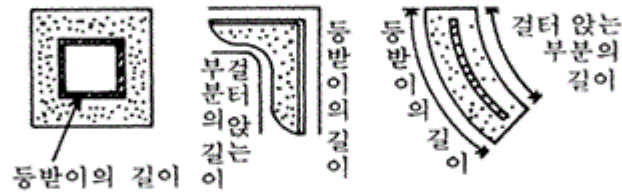


그림 2

라. 의자석과 좌석이 공존하는 경우에 여객정원은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 1) 의자석과 좌석이 그림 3과 같이 공존하고 또한 의자의 앞에 통로가 없는 경우에는 의자의 전면 30센티미터의 범위를 제외한 좌석면적에 대하여 정원을 산정한다. 이 경우 통로는 의자의 전면으로부터 3.7미터 이내에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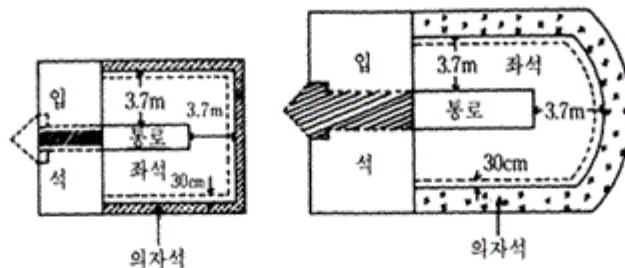


그림 3

- 2) 의자석과 좌석이 그림 4와 같이 공존하고 또한 의자 앞에 통로를 설치하여 그 통로의 너비가 6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의자석과 좌석에 대하여 각각 정원을 산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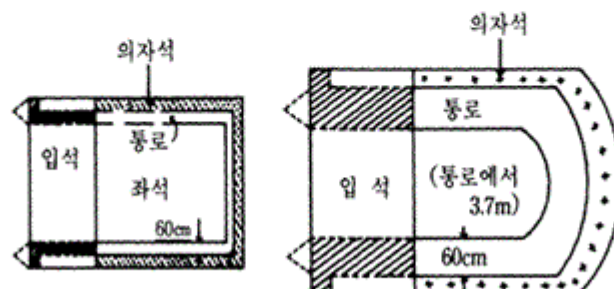


그림 4

마. 입석의 수용 인원은 그 면적을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단위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항해예정시간	단위면적(제곱미터)
1.5시간 이상 3시간 미만	0.35
1.5시간 미만	0.30

비 고

1. 입석은 높이 1.8미터 이상의 장소로 한정하여 정원을 산정한다. 다만, 출입구 내측 및 계단 하부의 공간(너비가 출입구 또는 계단의 너비의 1.5배 이상이고, 그 길이가 출입구 또는 계단의 너비 이상으로 설치한 공간)에 대하여는 입석정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입석을 동일 실내에서 다른 객석과 공존시키는 경우에는 라목에 따른 그림 3 및 그림 4의 사선 부분을 가상통로로 하여 이를 제외한 잔여면적을 입석면적으로 한다.

바.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처하여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한 경우의 여객정원은 20센티미터 이상의 건현 및 복원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항해예정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여객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의 면적(제곱미터)을 단위면적 0.3으로 나눈 수를 그 인원수로 한다.

사. 여객정원의 산정에 있어서 그 면적 또는 너비를 단위면적 또는 단위너비로 나누어 인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정수를 택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2.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으로서 항해예정시간이 3시간 미만인 항로에 취항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피서객이나 귀성객 등이 폭주하는 특별수송기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20센티미터 이상의 건현 및 복원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임시로 여객을 증원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여객수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개방장소에 대하여는 제1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방법. 이 경우 같은 호 마목 비고 2. 중 "실내"는 "개방장소"로 본다.

나. 여객실내의 입석에 대하여는 제1호마목에 따른 방법

3.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200톤 이상인 선박 및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선원실의 정원은 그 바닥의 면적을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단위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최대정수로 한다.

구 분(총톤수)	단위면적(제곱미터)
800톤 미만의 선박	1.85
800톤 이상 3,000톤 미만의 선박	2.35
3,000톤 이상의 선박	2.78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이 사용하는 선박의 선원실 바닥면적(침대, 가구 및 비품을 포함한다)은 다음 표에 따른다. 다만, 개인용 욕실 및 화장실 면적은 제외한다.

구분(총톤수)	단위면적(제곱미터)
---------	------------

	여객선·특수목적선 외의 선박		여객선 및 특수목적선			
	1인용	2인용	1인용	2인용	3인용	4인용
3,000톤 미만	4.5	7.0	4.5	7.5	11.5	14.5
3,000톤 이상 10,000톤 미만	5.5	—	5.5			
10,000톤 이상	7.0	—	7.0			

비 고

1.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이 사용하는 선원실의 1실당 최대허용인원은 여객선은 4명, 여객선이 아닌 총톤수 3,000톤 이상인 선박은 1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특수목적선의 침실은 4명을 초과하여 수용할 수 있으며 바닥면적은 1인당 3.6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총톤수 3,000톤 미만의 선박, 여객선 및 특수목적선에 1인용 침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바닥면적을 축소할 수 있다.
4. 총톤수 20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비고 1호부터 비고 3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침실에 추가하여 개인용 거실 또는 휴게실이 설치되는 경우 해당 면적은 3.0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의2. 제3호에도 불구하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선원법」 제2조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선장 및 직원용 선원실의 바닥면적(개인용 거실 또는 휴게실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다음 표에 따른다.

구분(총톤수)	단위면적(제곱미터)		
	여객선·특수목적선 외의 선박	여객선 및 특수목적선	
	선박 직원용	운항급 직원용	관리급 직원용
3,000톤 미만	7.5	7.5	8.5
3,000톤 이상 10,000톤 미만	8.5		
10,000톤 이상	10.0		

비 고

1. 선장 및 관리급 직원에 대하여는 침실에 추가하여 개인용 거실 또는 휴게실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만 총톤수 3,000톤 미만의 선박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2. 총톤수 20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비고 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개인용 거실 또는 휴게실이 있는 경우 그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선원실의 바닥면적을 5.5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다.

5.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선박이 아닌 선박에 대한 선원실의 정원은 다음 각 목의 합으로 한다.

가. 침대 수(선원이 선내에 숙박하지 않고 항해소요시간이 24시간 미만인 구

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의자석 수를 포함한다)

나. 침대 외의 좌석의 면적을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단위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최대정수

선박의 구분	단위면적(제곱미터)
연해구역 중 항해소요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1.10
연해구역 중 항해소요시간이 12시간 미만인 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0.55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0.45

6. 선원실은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7. 임시승선자에 대한 정원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1호(임시승선자 중 제5조제11호에 따른 산업인력의 경우에는 제1호마목을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여객"은 "임시승선자"로 본다.

8. 제7호에도 불구하고, 임시승선자 중 선원가족에 대한 정원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5호 및 제6호를 준용한다.

9. 제7호에도 불구하고 임시승선자 중 제5조제9호에 따른 화물관리인에 대한 정원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3호 및 제6호를 준용한다.

10.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형선박의 최대승선인원 산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소형선박의 최대승선인원은 선원실, 여객실 및 임시승선자의 거실 등의 정원을 합한 인원수로 한다.

나. 삭제 <2010.11.18>

다. 소형선박의 선원실, 여객실 및 임시승선자의 거실의 정원 산정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정수를 인원수로 한다. 다만, 선박의 구조·규모 및 항해상의 조건, 용도 등을 고려하여 선원실 등이 필요 없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소형선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 산정한 인원수의 합계로 할 수 있다.

(1) 의자석의 수용수는 그 정면 너비(단위 : 미터)를 0.40으로 나누어서 얻은 최대정수

(2) 입석의 수용수는 그 면적(단위 : 평방미터)을 0.30으로 나누어서 얻은 최대정수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1. 6. 30.>

해당 선박의 검사종류별 관련 도면(제29조제1항 관련)

1. 건조(별도건조)검사 관련 도면

가.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인 선박[여객선 및 항만건설작업선(「항만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작업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외한다]

1) 일반배치도 또는 선박의 길이, 너비, 깊이, 최대 승선인원, 격벽위치, 기관의 종류 및 출력 등이 기재된 제작사의 제품 안내 책자

2) 강재배치도 또는 재료배치도

3) 중앙횡단면도

4) 강도계산서(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선박은 선체판 두께측정 등에 따른 강도 계산서를 말하고, 2) 및 3)의 도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한다)

나. 선박길이 12미터 이상 24미터 미만인 선박(여객선 및 항만건설작업선은 제외한다)

1) 건조사양서(별도 건조검사 대상 선박은 제외한다)

2) 일반배치도

3) 선체선도(만재흡수선 표시 및 복원성기준 대상 선박으로 한정한다)

4) 배수량동곡선도(만재흡수선 표시 및 복원성기준 대상 선박으로 한정한다)

5) 중앙횡단면도

6) 강재배치도 또는 재료배치도

7) 외판전개도(강선과 알루미늄선으로 한정하며, 선체 형상이 단순한 상자형 구조인 부선은 제외한다)

8) 기관실전체장치도

9) 흡수표배치도(복원성자료 승인대상 선박으로 한정한다)

10) 제개구폐쇄장치도(만재흡수선 지정 선박으로 한정한다)

11) 전기계통도(동시에 사용하는 발전기 합계용량이 5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다. 여객선 및 선박길이 24미터 이상인 선박(항만건설작업선은 제외한다)

1) 나목의 도면

2) 구조 및 배치를 나타내는 설계도면

가) 선체

(1) 선체구조도(선체 형상이 단순한 상자형 구조인 부선은 제외한다)

(가) 상갑판하 선체구조도(별도건조 검사 대상 선박은 제외한다)

(나) 선미재 및 스트러트 구조도

(다) 선루 및 갑판실 구조도(별도건조 검사 대상 선박은 제외한다)

(라) 램프게이트(경사식 진출입문) 구조도

(마) 화물창코밍 및 덮개구조도

(2) 타(舵)구조도

- (3) 삭제 <2009.2.13>
- (4) 손상제어도 및 화재제어도(해당 선박으로 한정한다)
- (5) 방화구조도 및 방화용재료표(해당 선박으로 한정한다)
- (6) 돛대의 기초부 구조도(범선으로 한정한다)
- (7) 돛대의 강도계산서(범선으로 한정한다)

나) 기관

- (1) 축계장치도
- (2) 제관장치도(갑판배관장치를 포함한다)
- (3) 냉동기기배치도, 열부하계산서 및 이에 따른 배관도(해당 선박으로 한정한다)
- (4) 비틀림진동계산서(중간축구조도, 프로펠러축구조도, 프로펠러구조도 및 계산 관련 자료를 포함하며, 건조검사 대상 선박에 한정하고, 주기관 또는 보조기관을 교체하여 설치하거나 축계 등의 진동에 변화를 미치는 부분을 개조한 선박에 대하여 별도건조검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조타·계선 및 양묘 설비(별도건조 검사 대상 선박은 제외한다)

- (1) 조타장치도(해당 선박으로 한정한다)
- (2) 양묘설비장치도(무간묘를 비치하는 선박으로 한정하며 양묘설비, 호스 파이프, 체인스토퍼, 체인파이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라) 구명설비

구명설비배치도(각종 구명설비의 위치, 탈출경로, 신호장치 등을 나타내는 것.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또는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여객정원 36명 이상인 여객선으로 한정한다)

마) 소방설비

소방설비배치도(각종 소방설비의 위치, 용량, 수량 등을 나타내는 것.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또는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여객정원 36명 이상의 여객선으로 한정한다)

바) 거주설비

객석·출입구·통로·계단 등의 배치도(여객선으로 한정한다)

사) 위험물이나 그 밖의 특수화물의 적부설비

- (1) 위험물 적부설비(관련 지지구조, 배관장치, 통풍장치, 불활성가스장치, 측정장치, 제어장치, 감시장치를 포함한다)의 사양서, 배치도, 구조도, 용접시공요령서, 강도계산서, 위험구역배치도,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위험물산적운송선으로 한정한다)
- (2) 펌핑장치도(유조선과 위험물산적운송선으로 한정한다)
- (3) 화물적재고박지침서(해당 선박으로 한정한다)

아) 하역이나 그 밖의 작업설비

하역장치 배치 및 구조도(강도계산서 포함하며 해당 선박으로 한정한다)

자) 전기설비

- (1) 전력조사표(동시에 사용하는 발전기 합계용량이 5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2) 전기기기 배치도(동시에 사용하는 발전기 합계용량이 5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3) 선동배치도(전기기기배치도에 포함시킬 수 있다)

라. 항만건설작업선

1) 2007년 11월 4일 전에 건조된 항만건설작업선

- 가) 나목 2)부터 9)까지의 도면
- 나) 다목 2)의 나)(2)·다)(2)·라) 및 마)의 도면
- 다) 항만건설장비에 관한 도면
 - (1) 항만건설장비 설계명세서
 - (2) 항만건설장비 제작도 또는 항만건설장비의 외형크기, 구동종류 및 출력 등이 기재된 제작사의 제품 안내 책자
 - (3) 항만건설장비 받침대(선체에 고정하는 부분을 말한다) 구조도
 - (4) 항만건설장비 기본용량계산서(성능계산서 및 기계장치계산서를 포함한다)
 - (5) 항만건설장비 구조강도계산서 및 안정도계산서

2) 2007년 11월 4일 이후에 건조된 항만건설작업선

- 가) 다목의 도면
- 나) 1)다)에 따른 항만건설장비에 관한 도면

2. 정기검사 관련 도면

가. 제1호의 도면

- 나. 만재홀수선(목재만재홀수선 및 구획만재홀수선은 제외한다)에 관한 검사를 받는 선박의 경우에는 다음의 도면(금속제 외판이 있는 선박은 늑골의 외면, 그 밖의 외판이 있는 선박은 외판의 외면에 대한 도면을 말한다)

- 1) 선체선도
- 2) 최상층의 전통갑판까지의 각 홀수에 대한 전배수량 및 매 1센티미터의 배수량을 나타내는 곡선도 또는 표

- 다. 목재만재홀수선에 관한 검사를 받는 선박은 갑판에 적재하는 목재화물의 적재에 필요한 장치의 구조 및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 라. 구획만재홀수선에 관한 검사를 받는 선박의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또는 도면

- 1) 한계선까지의 각 홀수에 대한 부력의 중심으로부터 종메타센터 및 횡메타센터까지의 높이를 나타내는 곡선도 또는 표
- 2) 한계선까지의 각 홀수에 대한 부면심으로부터 선체 중앙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곡선도 또는 표
- 3) 각 횡단면의 한계선까지의 면적을 나타내는 곡선도 또는 표
- 4) 가허장의 계산서
- 5) 가허장을 나타내는 곡선도 또는 표

- 6) 한계선까지의 각 홀수에 대한 각 스퀘어스테이션마다의 면적 및 기선으로 부터 그 면적의 중심까지의 높이를 나타내는 곡선도 또는 표
- 7) 손상 시의 복원성 계산서
- 8) 교차침수설비의 배치도

마. 복원성시험을 받는 선박은 다음의 서류 또는 도면

- 1) 배수량등곡선도 또는 표
- 2) 복원력교차곡선도 또는 표
- 3) 해수유입각곡선도 또는 표
- 4) 계획중량중심트림계산서

바. 하역장치에 관한 검사를 받는 선박은 강력계산서(역선도를 포함한다)

사. 잠수설비에 관한 검사를 받는 선박은 다음의 서류 또는 도면

- 1) 잠수설비의 강도계산서 및 부력계산서
- 2) 잠수설비의 급기장치, 배기장치 및 전기설비를 나타내는 도면
- 3) 잠수설비의 사용재료를 나타내는 서류
- 4) 잠수설비의 사용방법을 나타내는 서류

아. 승강설비에 관한 검사를 받는 선박은 다음의 서류

- 1) 승강설비의 강력계산서
- 2) 승강설비의 사용재료를 나타내는 서류
- 3) 승강설비의 사용방법을 나타내는 서류

자. 컨테이너설비에 관한 검사를 받는 선박은 그 사용재료를 나타내는 서류

3. 임시검사 관련 도면

가.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개조 또는 수리를 하려는 선박은 그 개조 또는 수리와 관계있는 제1호 각 목의 해당 도면

나. 규칙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선박용물건을 새로 설치하려는 선박은 제1호 각 목의 해당 도면

다. 규칙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선박용물건을 변경하려는 선박은 그 변경과 관계있는 제1호 각 목의 해당 도면

라. 새로 만재홀수선(목재만재홀수선과 구획만재홀수선은 제외한다)에 관한 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은 다음의 도면

- 1) 종통판 각조의 너비가 적혀 있는 선체중앙횡단면도
- 2) 선체중심선종단면의 모든 구조부재의 배치도
- 3) 갑판 및 창내평면의 모든 구조부재의 배치도
- 4) 갑판평면도
- 5) 제2호나목에 따른 도면

마. 새로 목재만재홀수선에 관한 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은 제2호다목에 따른 도면

바. 새로 구획만재홀수선에 관한 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은 제2호라목에 따른 서류 또는 도면

사. 만재홀수선(목재만재홀수선과 구획만재홀수선을 포함한다)의 위치를 변경하

려는 선박은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서류 또는 도면 중 그 변경과 관계 있는 서류 또는 도면

아. 새로 하역장치에 관한 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은 다음의 서류 또는 도면

- 1) 하역장치 배치도
- 2) 하역장치 구조도
- 3) 제2호바목에 따른 서류

자. 하역장치를 변경하려는 선박은 아목에 따른 서류 중 그 변경과 관계있는 서류 또는 도면

차. 새로 잠수설비에 관한 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은 제2호사목에 따른 서류 또는 도면

카. 잠수설비를 변경하려는 선박은 차목에 따른 서류 중 그 변경과 관계있는 서류 또는 도면

타. 새로 승강설비에 관한 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은 다음의 서류 또는 도면

- 1) 승강설비배치도
- 2) 승강설비의 구조도
- 3) 제2호아목에 따른 서류

파. 승강설비를 변경하려는 선박은 타목에 따른 서류 중 그 변경과 관계있는 서류 또는 도면

하. 새로 컨테이너설비에 관한 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은 제2호자목에 따른 서류

거. 새로 복원성시험을 받으려는 선박은 다음의 서류 또는 도면

- 1) 일반배치도
- 2) 선체중앙횡단면도
- 3) 개구상세도
- 4) 선체선도
- 5) 제2호마목에 따른 서류 또는 도면

너. 복원성과 관계있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선박은 거목에 따른 서류 중 그 변경과 관계있는 서류 또는 도면

더. 항만건설장비를 변경하려는 항만건설작업선은 제1호라목1)다)에 따른 도면 중 그 변경과 관계있는 도면

4. 예비검사 관련 도면

가.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인 선박의 선체

- 1) 일반배치도
- 2) 선체선도
- 3) 중앙횡단면도
- 4) 재료배치도
- 5) 강도계산서(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선박은 선체판 두께측정 등에 따른 강도 계산서를 말하고, 3) 및 4)의 도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한다)

나. 내연기관

- 1) 조립횡단면도 및 조립종단면도

- 2)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피스톤쿨링재킷구조도
- 3) 크랭크축(평형추 및 볼트, 커플링볼트를 포함한다) 구조도
- 4) 피스톤, 크로스헤드, 피스톤로드 및 연결봉 조립도(볼트를 포함한다)
- 5) 연료분사관 및 피복장치도
- 6) 제관장치도(연료유, 윤활유, 냉각유, 냉각수, 공기 및 유압의 각 계통을 포함하여 관의 재질, 치수, 사용압력 등을 기입한 것을 말한다)
- 7) 베드 및 스러스터블록과 기관대와의 거치상세도(주기관으로 한정한다)
- 8) 크랭크실 도출밸브의 구조 및 배치도(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9) 소기용송풍기 또는 배기터빈과급기의 조립단면도
- 10) 기관 주요 요목(종류, 형식, 연속최대출력, 연속최대회전수, 착화순서, 실린더내최대압력, 도시평균유효압력, 정미평균유효압력, 각 실린더의 왕복운동부의 질량, 플라이휠의 중량 및 지름, 평형추의 질량, 회전반지름 및 부착위치, 배기터빈과급기의 사양 등)을 적은 것
- 11) 주요 부품의 재료 및 강도계산서
- 12) 기관진동에 관한 자료(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13) 수입신품 및 조립완성품의 내연기관(선내외기와 선외기는 제외한다)은 1), 7), 10), 12) 및 정비지침서로 한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주요 부품의 재료 및 강도계산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14) 22 kW [30 PS] 미만의 기관은 1) 및 11)로 한정한다.

다. 가스터빈

- 1) 조립단면도
- 2) 터빈케이싱, 터빈로터 및 블레이드의 구조도
- 3) 터빈 및 보조 컴프레서의 거치상세도
- 4) 노즐 배치 및 노즐 상세도
- 5) 제관장치도(연료유, 윤활유, 냉각수, 공기 및 유압의 각 계통을 포함하여 관의 재질, 치수 및 사용압력 등을 적어 넣은 것을 말한다)
- 6) 제어 및 안전장치계통도
- 7) 가스터빈의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 주요 부품의 강도계산 및 축계비틀림진동에 관한 자료

라. 선외기[원동기와 프로펠러축 및 조향장치(방향조절장치)를 포함하는 드라이브 유니트가 일체형으로 된 것으로서 원동기는 선체 내부에, 드라이브 유니트는 선체 외부에 있는 기관을 포함한다]

- 1) 기관 주요 요목
- 2) 외형도
- 3) 거치도
- 4) 정비지침서 또는 정비표준서

마. 보일러

- 1) 기기배치도 및 전체조립도
- 2) 동체, 노통 및 헤더 등의 상세도 및 노즐상세도

- 3) 배관의 배열 및 상세도(밸브의 배치, 관의 재질, 치수 및 사용압력 등을 기입한 것을 말한다)
- 4) 공기에열기, 보일러부착품장치도 또는 장치선도
- 5) 안전밸브의 조립도
- 6) 자동제어 및 원격제어계통도
- 7) 보일러의 주요 요목, 주요 재료 및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바. 압력용기

- 1) 전체조립도
- 2) 동체 및 헤더 등의 상세도
- 3) 안전밸브의 조립도
- 4) 자동제어 및 원격제어 계통도
- 5) 압력용기의 주요 요목, 주요부품의 재료 및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 6) 제3종 압력용기는 1) 및 5)로 한정한다.

사. 공기압축기(수동식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 1) 조립단면도 및 크랭크축 상세도
- 2) 제어 및 안전장치계통도
- 3) 제관장치도(윤활유, 냉각수 및 압축공기의 각 계통을 포함하여 관의 재질, 치수 및 사용압력 등을 기입한 것을 말한다)
- 4) 공기압축기의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 및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아. 축계장치

- 1) 전체조립도 또는 축계장치도
- 2) 추력축, 중간축, 프로펠러축 및 동력전달축의 구조도
- 3) 커플링 및 커플링볼트 구조도
- 4) 선미관, 선미관베어링, 스트럿베어링 및 선미관실장치구조도
- 5) 프로펠러 구조 및 상세도
- 6) 주요 부품의 재료, 주요부품의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 7) 비틀림진동계산서(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자. 축계의 클러치, 역전기, 유체 커플링 또는 탄성 커플링

- 1) 조립단면도
- 2) 주요 부분의 구조도
- 3) 각 장치의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 및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차. 감속장치

- 1) 조립단면도
- 2) 각 기어, 기어축, 플렉시블 커플링, 플렉시블 축 등 주요 부분의 구조도
- 3) 감속기어장치의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 및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카. 아웃드라이버 및 러더프로펠러장치

- 1) 조립단면도
- 2)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 주요 부품의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타. 워터제트추진장치

법제처

- 1) 조립단면도
- 2) 임펠러, 주축, 물흡입관로부, 노즐, 디플렉터, 리버서의 구조도
- 3)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 주요 부품의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 4) 비틀림진동계산서(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파. 펌프류

- 1) 조립단면도
- 2)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 주요 부품의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하. 액량측정장치, 유량계, 유가열기

- 1) 조립단면도
- 2)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에 관한 자료

거. 관 및 밸브류

- 1)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 2)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 사용유체·압력·온도에 대한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너. 원격제어장치

- 1) 원격제어 및 안전장치계통도
- 2) 제어반의 조립단면도 및 결선도

더. 유압조타장치

- 1) 기기배치도 및 전체조립도
- 2) 조정 및 안전장치계통도
- 3) 제관장치목록표
- 4) 조타장치의 주요 요목, 취급설명서, 주요 부품의 재료 및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러. 구명정·구조정·구명뱃목의 데킷

- 1) 전체구조도(주요재료 내용을 포함한다)
- 2) 하중에 대한 강력계산서

머. 원치

- 1) 기기배치도 및 전체조립도
- 2) 조정 및 안전장치계통도
- 3) 제관장치도(관의 재질, 치수 및 사용압력 등을 적어 넣은 것을 말한다)
- 4) 하중에 대한 강력계산서
- 5) 원치의 주요 요목, 취급설명 및 주요 부품의 재료의 사양

버. 구명정 또는 구조정

- 1) 선체선도
- 2) 재료배치도

서. 발전기 또는 전동기

- 1) 전체조립도
- 2) 내부접속도
- 3) 회전축상세도

4) 발전기 또는 전동기의 주요 요목, 특성 및 축재료의 사양

어. 변압기

1) 전체조립도

2) 내부접속도

3) 변압기의 주요 요목 및 특성자료

저. 배전반 또는 제어기

1) 전체조립도

2) 내부접속도

3) 배전반 또는 제어기의 주요 요목 및 특성자료

처. 냉동장치

1) 제어 및 안전장치계통도

2) 냉매압축기의 조립단면도 및 크랭크축 상세도

3) 냉동기의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 및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커. 선회식 추진장치

1) 조립단면도와 관장치도

2) 축계, 조타장치, 기어, 축 커플링 및 커플링 볼트의 구조도

3) 베어링 사양

4) 비틀림진동계산서(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 주요 부품의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터. 사이드 스러스터

1) 사이드 스러스터의 전체장치도

2) 조립단면도

3) 제어기구 계통도

4) 축계 및 시일장치도

5) 주요 요목(구동 원동기의 종류, 출력 및 회전수, 용량 등을 기재한 것), 주

요 부품의 재료, 주요 부품의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퍼. 그 밖의 설비

1) 설비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2) 설비의 주요 요목, 재료 및 강도가 요구되는 것은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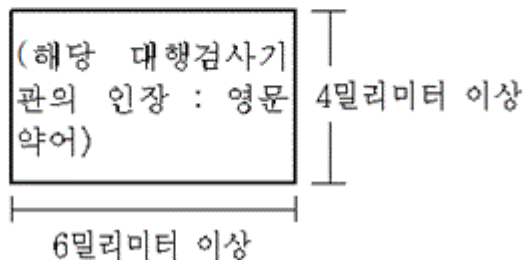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19. 8. 20.>

도면승인 표시(증인) (제29조제2항 관련)

1. 해양수산부장관의 증인(證印)



2.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나 선급법인의 증인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1. 6. 30.>

건조검사 및 별도건조검사 준비사항(제30조제1항제1호 관련)

1. 선체에 관한 준비

- 가. 선체 내외부의 적당한 장소에 안전한 발판을 설치할 것
- 나. 재료시험(별도건조검사는 제외한다), 비파괴검사(해양수산부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길이 24미터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생략할 수 있다. 이하 제2호의 비파괴검사의 준비에 관하여 같다), 압력시험 및 하중시험의 준비를 할 것
- 다. 나목의 압력시험은 수압시험이나 기밀시험의 방법으로 하고, 다음에 따라 확인한다.
- 1) 압력시험의 범위는 강력갑판 아래의 선체, 선루 또는 상갑판 위의 첫째 갑판실로 하고, 반드시 선박검사관(대행검사기관이 대행하는 경우 선박검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입회하여야 한다.
 - 2) 물높이나 압력을 확인하고, 물이나 공기가 새지 아니하는지 확인한다.
 - 3) 압력이 걸린 상태에서 부재(部材)가 변형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 후 보강한다.
 - 4) 선체 각 부에 대한 수압시험은 다음의 방법으로 한다.

항 목	수압시험의 기준
이중저	정판부터 공기관 상단까지의 물높이에 따른 압력과 정판부터 격벽갑판까지의 물높이에 따른 압력 중 큰 것에 상당하는 압력
노출된 상갑판 및 선루갑판 단격벽에 제2급폐쇄장치를 갖춘 선루 내의 상갑판 수밀격벽 및 그 계단부	호스내 압력이 2 bar [2 kgf/cm ²]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외판	호스 내 압력이 2 bar [2 kgf/cm ²]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또는 물높이에 따른 압력. 다만, 이중저·선수창 등을 구성하는 부분의 외판은 그 각 부분의 수압시험의 방법에 따른다.
선수격벽 후방에 있는 묘쇄고	정판까지의 물높이에 따른 압력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 외의 선박의 선수창(물탱크나 유탱크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만재홀수선까지의 물높이에 따른 압력과 선수격벽의 높이의 3분의2까지의 물높이에 따른 압력 중 큰 것에 상당하는 압력. 다만, 그 수선 이상의 부분은 호스 내의 압력이 2 bar [2 kgf/cm ²]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의 선수창 및 내측외판	한계선까지의 압력 정도의 압력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의 수밀격벽의 수밀문	취부 전	한계선까지의 물높이에 따른 압력에 상당하는 압력
	취부 후	호스 내의 압력이 2 bar [2 kgf/cm ²]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외의 선박의 수밀격벽의 수밀문	취부 전	그 수밀격벽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높이에 따른 압력에 상당하는 압력
	취부 후	호스 내의 압력이 2 bar [2 kgf/cm ²]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선미창(물탱크나 유탱크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선미관구확실	만재흡수선까지의 물높이에 따른 압력에 상당하는 압력. 다만, 만재흡수선 이상의 부분은 호스 내의 압력이 2 bar [2 kgf/cm ²]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물탱크나 유탱크로 사용하는 선수창 또는 선미창 디프탱크	정판부터 다음 위치까지의 물높이에 따른 압력 중 가장 큰 것에 상당하는 압력 1) 넘침관의 상단 2) 만재흡수선 3) 정판 위 2.4미터의 높이 4) 선박 깊이의 상부기점으로부터 정판까지의 수직거리의 3분의 2를 정판부터 상방으로 수직으로 측정한 높이	
제1급폐쇄장치의 개구를 설치한 선루 및 저선미루단의 격벽	호스 내의 압력이 2 bar [2 kgf/cm ²]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축로		
그 밖의 수밀통로		
제1급폐쇄장치를 설치한 선루단격벽의 출입구		
수밀폐쇄장치를 갖춘 갑판구(창구를 포함한다)		
현문, 재화문 및 현창	화물유탱크의 정판을 구성하는 갑판(팽창트렁크가 있는 화물유탱크에 있어서는 팽창트렁크의 정판)의 현측에 있어서 상면으로부터 2.4미터까지의 물높이에 따른 압력에 상당하는 압력. 다만, 해당 탱크의 기능이 도달하는 가장 높은 장소에 상당하는 물높이에 따른 압력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유조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의 화물유탱크		
펌프실과 겸용하지 아니하는 코퍼댐	정판부터 창구 정부까지의 물높이에 따른 압력에 상당하는 압력	
펌프실과 겸용하는 코퍼댐	호스 내의 압력이 2 bar [2 kgf/cm ²]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활어창	정판까지의 장수에 따른 압력	
복판타	1.5 D 또는 2 d 중 작은 값의 물높이에 따른 압력에 상당하는 압력. 이 경우 D는 선박 깊이, d는 지정된	

	홀수로 한다.
위험물 외의 가연성 액체를 운송하는 액체화학품산적운송선 및 액화가스물질운송선의 탱크	정관상 $2.4+h(r-1)$ 미터의 물높이에 따른 압력에 상응하는 압력. 이 경우 h 는 해당 탱크의 높이, r 은 액체의 비중으로 한다. 다만, $r<1$ 인 경우에는 r 을 1로 한다.

2. 기관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별도건조검사는 제외한다), 비파괴검사, 용접시공시험, 평형시험, 압력시험, 효력시험, 축기시험, 도기시험 및 육상 시운전의 준비를 할 것

3. 배수설비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별도건조검사는 제외한다), 압력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4. 조타·계선 및 양묘설비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별도건조검사는 제외한다), 압력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5. 전기설비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별도건조검사는 제외한다), 방수시험, 방폭시험, 완성시험, 절연저항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1. 6. 30.>

정기검사 준비사항(제30조제1항제2호 관련)

1. 선체에 관한 준비

가. 입거(入渠) 또는 상가(上架)를 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선박길이 24미터 미만인 목선 및 특수제질선박과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인 강선을 받침대 등으로 들어 올려놓은 경우
- 2) 입거 또는 상가의 시설이 없는 호소·하천·항내의 수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길이 24미터 미만인 선박의 선저를 검사할 수 있도록 수면 밖으로 끌어올린 경우

나. 타를 들어 올리거나 빼낼 것

다. 선체에 붙어있는 해초·조개류 등을 깨끗이 떼어낼 것

라. 목선의 선체 외판에 덧붙인 선체보호용 포판의 일부를 떼어낼 것

마. 선체 내부에 있는 화물 및 고정밸러스트를 떼어낼 것

바. 선체 내부의 선체에 고착되지 아니하는 물품을 정리할 것

사. 탱크의 맨홀을 열어 놓고 내용물 및 위험성가스를 배출할 것

아. 화물구획의 내장판의 일부를 떼어낼 것

자. 갑판피복 및 선저 시멘트의 일부를 떼어낼 것

차. 강제선체 주요부의 녹을 떨어내고 두께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할 것

카. 선체 내외부의 적당한 장소에 안전한 발판을 설치할 것

타. 재료시험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파. 비파괴검사의 준비를 할 것(해양수산부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박길이 24미터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생략할 수 있다. 이하 제2호 아목 및 제7호라목의 비파괴검사의 준비에 관하여 같다)

하. 압력시험 및 하중시험의 준비를 할 것

거. 수밀문·방화문 등 폐쇄장치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너. 유조선·산적화물선 또는 위험물산적운송선의 경우에는 다음의 준비를 추가할 것

- 1) 화물창, 평형수탱크, 그 밖의 밀폐구역의 위험성가스를 충분히 배출할 것
- 2) 선박검사 시 부식·변형·균열 등 손상에 따른 결함이 잘 보이도록 물·녹·오물·기름잔류물 등을 제거하고 충분한 조명설비를 준비할 것
- 3) 밀폐된 구역의 검사 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갑판에 연락책임자를 배치하고 선박검사관과의 통신장비를 설치할 것
- 4) 다음의 서류를 선내에 갖추어 두고 선박검사관에게 제시할 것

가) 선체요목서

나) 최종회 검사 시에 실시된 판두께 측정보고서

다) 화물창 및 평형수탱크의 주요 구조도면 및 사용기록

라) 화물창 및 평형수탱크의 도장상태에 관한 검사기록(부식방지용 도료의 중

류 및 도장의 일시·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 불활성가스장치의 사용범위와 탱크세정절차에 관한 서류(유조선으로 한정한다)

바) 화물창, 평형수탱크 및 관장치의 수리기록

2. 기관에 관한 준비

가. 주기관

1) 내연기관

가) 실린더커버를 떼어내고 피스톤 및 실린더라이너를 들어낼 것

나) 실린더커버·피스톤 및 실린더의 냉각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분해할 것

다) 크랭크암의 개폐량을 잴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고속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크랭크축의 베어링의 상반(上盤) 또는 하반(下盤)과 크로스헤드핀 및 크랭크핀의 베어링을 떼어낸 후 크랭크축을 회전할 수 있도록 하고, 크랭크축과 크랭크암과의 접합부를 검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크랭크축을 들어 올려 놓을 것

마) 배기터빈과급기 및 소기장치의 내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작동부분을 들어낼 것

바) 작동에 직접 관계있는 중요한 밸브를 분해할 것

2) 가스터빈

가) 터빈 및 압축기 차실의 상반을 떼어내고 로터를 들어 올려 놓을 것

나) 연소기 및 열교환기의 내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분해할 것

다) 작동에 직접 관계있는 중요한 밸브를 분해할 것

3) 증기터빈

가) 터빈 차실의 상반을 떼어내고 로터를 들어올려 놓을 것

나) 축, 글랜드, 추력조정베어링, 오일드레인 및 실링관을 검사할 수 있도록 분해할 것

다) 작동에 직접 관계가 있는 중요한 밸브를 분해할 것

나. 추진축계

1) 프로펠러를 빼내고 프로펠러축(선미관축을 포함하며, 워터제트 추진장치의 경우에는 주축을 말한다)을 뽑아낼 것. 다만, 워터제트 추진장치의 경우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한 후, 확인결과에 따라 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정되면 주축을 뽑아내지 않을 수 있다.

가) 커플링 볼트의 상태

나) 주축의 선수축 및 선미축 베어링 상태

다) 임펠러 보스와 주축의 접촉부분의 상태(키 및 스플라인으로 부착한 경

우)

라) 임펠러 상태

마) 주축 선수축 밀봉장치의 주요부분

바) 개방된 스러스트 베어링 상태

- 2) 각 베어링의 상반 또는 커버 및 스러스트패드를 빼내고 각 축을 회전할 수 있도록 할 것
- 3) 선미관 후단의 경우 축과 지면재의 틈을 쥔 수 있도록 할 것
- 4) 가변 피치프로펠러의 프로펠러 내부의 변절기구 또는 회전 부분을 검사할 수 있도록 분해하고 각 날개를 떼어낼 것
- 5) 가변 피치프로펠러에 부착된 조정밸브 및 변절유뿔프를 검사할 수 있도록 분해할 것
- 6) 동력전달장치를 분해할 것

다. 보일러 및 압력용기

- 1) 보일러의 내부 및 화염이 닿는 부분과 압력용기의 내부를 청소한 후 맨홀, 청소구멍 및 검사구멍의 커버를 떼어내고, 부착된 중요한 밸브 및 콕을 분해할 것
- 2) 보일러의 스모크박스도어를 열어 놓을 것
- 3) 보온재 등 보일러의 바깥 부분을 떼어내고 판 및 관의 두께를 쥔 수 있도록 할 것

라. 보조기관

- 1) 선박의 추진 및 항해와 관계있는 발전기 또는 선박의 추진과 관계있는 보기(補機)를 구동하는 보조기관은 가목의 준비를 할 것
- 2) 1) 외의 보조기관으로서 선박의 항해에 관계있는 보기를 구동하는 보조기관은 실린더커버, 크랭크축의 베어링의 상반 또는 하반, 크랭크핀베어링, 그 밖의 주요한 베어링을 떼어낼 것

마. 보기 및 관장치

- 1) 보기의 내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작동 부분을 빼낼 것
- 2) 연료유탱크, 여과기, 밸브, 콕, 그 밖의 관장치의 내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것

바. 비품은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사. 재료시험, 용접시공시험, 평형시험, 축기시험 및 육상 시운전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아. 비파괴검사의 준비를 할 것

자. 압력시험, 효력시험 및 도기시험의 준비를 할 것

3. 배수설비에 관한 준비

가. 펌프의 플런저, 피스톤, 임펠러, 그 밖의 작동 부분을 빼내고, 밸브케이싱을 분해할 것

나. 최고 항해홀수선 이하에서 선외로 통하는 밸브 및 콕을 분해할 것

다. 로즈박스 및 머드박스를 분해할 것

라. 압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4. 조타, 계선 및 양묘설비에 관한 준비

가. 닻, 닻쇠사슬 또는 로프와 계선용 로프를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 나. 재료시험 및 압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다.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 5. 구멍 및 소방설비에 관한 준비
 - 가. 떼어내어 검사하여야 하는 것은 떼어내어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 나. 재료시험 및 압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다.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 6. 항해설비에 관한 준비
 - 가. 떼어내어 검사하여야 하는 것은 떼어내어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 나.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 7. 위험물이나 그 밖의 산적화물의 적부(積付)설비에 관한 준비
 - 가. 탱크의 맨홀을 열고, 내용물 및 위험성가스를 배출할 것
 - 나. 탱크 내외의 적당한 장소에 안전한 발판을 설치할 것
 - 다. 재료시험, 용접시공시험 및 압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 라. 비파괴검사의 준비를 할 것
 - 마.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 8. 하역이나 그 밖의 작업설비에 관한 준비
 - 가. 원치 내부의 주요 부분을 검사할 수 있도록 분해할 것
 - 나. 하역장치의 하중시험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다. 재료시험 및 압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라.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 9. 전기설비에 관한 준비
 - 가. 재료시험, 방수시험, 방폭시험 및 완성시험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나. 절연저항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 10. 컨테이너설비에 관한 준비
 - 가. 재료시험 및 하중시험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나.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 11. 승강설비에 관한 준비
 - 가. 호이스트(卷上機) 내부의 주요 부분을 검사할 수 있도록 분해할 것
 - 나. 재료시험 및 하중시험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다.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 12. 복원성시험에 관한 준비(처음으로 검사를 받거나 복원성에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 복원성시험의 장소는 바람·파랑·조류 등의 영향이 적은 곳을 택할 것
 - 나. 복원성시험 실시 중에 예상되는 외력에 따른 영향을 피할 수 있도록 계류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다. 선박 완성 시에 탑재할 설비나 그 밖의 물건은 선내의 정위치에 탑재할 것
- 라. 선박 완성 시에 탑재하지 아니하는 설비나 그 밖의 물건으로서 복원성시험에 필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선내에서 제거할 것
- 마.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목과 라목에 따르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위치에 탑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제거하지 못한 물건에 대하여 그 중량 및 탑재위치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작성할 것
- 바. 선내의 모든 탱크를 비우거나 채우고, 탱크 외의 물·기름 등을 제거할 것
- 사. 부득이한 사정으로 탱크를 비우거나 채우기 곤란한 경우에는 탱크 내 액체의 자유표면에 따른 영향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 자료를 작성할 것
- 아. 선내의 이동하기 쉬운 탑재물은 복원성시험 실시 중에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고정할 것
- 자. 해당 선박의 계획트림 외에는 가급적 트림을 적게 할 것
- 차. 해당 선박을 횡경사시키기에 적당한 중량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정확하게 측정된 이동중량물을 선박에 탑재할 것
- 카. 횡경사각의 측정을 위하여 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추의 길이를 길게 하고, 그 동요를 적게 하기 위한 시험수조를 준비할 것
- 타. 동요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횡요각을 가급적 크게 할 수 있는 인원이나 적당한 용구를 준비할 것
- 13. 거주 및 위생설비에 관한 준비
 -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 14. 만재흡수선 및 무선설비에 관한 준비
 -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 15. 냉동, 냉장 및 수산물처리가공설비에 관한 준비
 -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 16. 해상 시운전의 준비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3. 4. 12.>

중간검사 준비사항(제30조제1항제3호 관련)

1. 제1종 중간검사

가. 선체에 관한 준비

별표 10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카목(선체 외부로 한정한다), 거목 및 너목의 준비를 할 것

나. 기관에 관한 준비

1) 주기관

가) 내연기관

(1) 실린더커버를 떼어낼 것

(2) 크랭크암의 개폐량을 잴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고속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크랭크축의 베어링의 상반 또는 하반과 크랭크핀베어링을 떼어낸 후 크랭크축을 회전할 수 있도록 하고, 크랭크축과 크랭크암과의 접합부를 검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크랭크축을 들어올려 놓을 것

(4) 배기터빈 과급기 및 소기장치의 내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것

나) 가스터빈 및 증기터빈은 터빈 및 압축기 차실의 상반과 로터베어링의 상반을 떼어낸 후 로터를 회전할 수 있도록 할 것

2) 추진축계

가) 프로펠러를 빼내고 프로펠러축(선미관축을 포함하며, 워터제트 추진장치의 경우에는 주축을 말한다)을 뽑아낼 것. 다만, 워터제트 추진장치의 경우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한 후, 확인 결과에 따라 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정되면 주축을 뽑아내지 않을 수 있다.

(1) 커플링 볼트의 상태

(2) 주축의 선수축 및 선미축 베어링 상태

(3) 임펠러 보스와 주축의 접촉부분 상태(키 및 스플라인으로 부착한 경우)

(4) 임펠러 상태

(5) 주축 선수축 밀봉장치의 주요부분

(6) 개방된 스러스트 베어링 상태

나) 각 축 베어링의 상반 또는 커버 및 스러스트베어링을 떼어내고 각 축을 회전할 수 있도록 할 것

다) 선미관 후단에 있어서 축과 지면재와의 틈을 잴 수 있도록 할 것

라) 가변 피치프로펠러의 프로펠러 내부의 변절기구 또는 회전 부분을 검사할 수 있도록 분해하고, 날개를 한 장 떼어낼 것

마) 감속장치 기어의 톱니를 검사할 수 있도록 분해할 것

3) 보일러

가) 보일러의 내부 및 화염이 닿는 부분과 압력용기의 내부를 청소한 후 맨홀, 청소구멍 및 검사구멍의 커버를 떼어내고, 부속된 중요한 밸브 및 콕을 분해할 것

나) 보일러의 스모크박스도어를 열어 놓을 것

다) 보온재 등 보일러 바깥 부분의 일부를 떼어내고, 판과 관의 두께를 잴 수 있도록 할 것

4) 선박의 추진 및 항해와 관계있는 발전기 또는 선박의 추진과 관계있는 보기를 구동하는 보조기관은 1)의 준비를 할 것

5) 보기 및 관장치

가) 보기의 내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작동 부분을 빼낼 것

나) 연료유탱크, 여과기, 밸브, 콕, 그 밖의 관장치의 내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것. 다만, 경질유(중질유가 아닌 원유 또는 연료유를 말한다)를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내부 검사를 위한 개방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6) 비품은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7) 효력시험 및 도기시험의 준비를 할 것

다. 배수설비에 관한 준비

별표 10 제3호의 준비를 할 것

라. 조타, 계선 및 양묘설비에 관한 준비

돛, 돛쇠사슬 또는 로프와 계선용 로프를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마. 구멍 및 소방설비에 관한 준비

1) 떼어내어 검사하여야 하는 것은 떼어내어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2)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바. 항해설비에 관한 준비

떼어내어 검사하여야 하는 것은 떼어내어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사. 위험물의 적부설비 및 하역설비에 관한 준비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아. 전기설비에 관한 준비

절연저항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자. 컨테이너설비에 관한 준비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차. 승강설비에 관한 준비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카. 거주 및 위생설비에 관한 준비

-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 타. 만재흡수선 및 무선설비에 관한 준비
 -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 파. 냉동, 냉장 및 수산물처리가공설비에 관한 준비
 -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2. 제2종 중간검사

- 가. 만재흡수선의 표시를 검사할 수 있도록 안전한 발판을 설치할 것
- 나. 수밀문·방화문 등 폐쇄장치에 대한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 다. 기관, 배수설비, 조타설비, 구명 및 소방설비, 항해용구 및 위험물의 적부설비는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 라. 전기설비의 경우에는 절연저항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 마. 선령 10년을 넘는 산적화물선의 화물창의 경우에는 별표 10의 제1호너목 1) 부터 3)까지의 준비를 할 것
- 바. 거주 및 위생설비에 관한 준비
 -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 사. 만재흡수선 및 무선설비에 관한 준비
 -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2] [별표 15의2]로 이동 [<2018. 5. 1.>](#)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원자력설비 및 잠수설비 등 특수한 구조나 설비를 가진 선박에 대한
검사의 준비사항(제31조제1항 관련)

1. 정기검사

- 가. 내압동체의 두께 및 형상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할 것
- 나. 재료시험의 준비(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다. 비파괴검사의 준비
- 라. 압력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

2. 중간검사

- 가. 내압동체의 두께 및 형상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할 것
- 나. 효력시험의 준비

3. 임시검사

- 가. 새로 제조된 잠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1호의 검사준비
- 나. 현존의 잠수설비를 새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2호의 검사준비. 다만, 해당 잠수설비가 정기검사를 받은 때부터 5년 이상 지난 경우에는 제1호의 검사준비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 2021. 6. 30.>

수중검사준비와 그 검사방법(제31조제8항 관련)

1. 수중검사준비

- 가. 선박은 가능한 한 경하[선박에 사람, 화물, 연료, 윤활유, 선박평형수, 탱크 안의 청수(淸水) 및 보일러수, 소모저장품과 여객 및 선원의 휴대품을 적재하지 않은 것]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나. 검사장소는 조류가 약하고 파고가 낮으며 수면 밑의 시계가 양호한 장소로서 잠수부가 수중검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에 충분한 수심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 다. 선박검사관은 다음의 도면을 준비하여 선박소유자와 수중검사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내수면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은 도면의 준비를 생략할 수 있다.

- 1) 일반배치도
- 2) 외판전개도(강제 선박 및 알루미늄 합금제 선박으로 한정한다)

2. 수중검사방법

- 가. 수중검사는 다음 부위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 1) 만재흡수선하의 선체외판
 - 2) 시체스트(Sea Chest: 해수 유입구), 개구, 선미재 및 빌지킬(Bilge Keel: 선박이 흔들리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측과 선저를 잇는 만곡부에 설치된 얇고 긴 판)
 - 3) 프로펠러축 스트럿, 타 및 부착품
 - 4) 프로펠러 및 로프가드
 - 5) 스러스터
 - 6) 선미관 베어링 틸새(해수유회) 및 타의 베어링 틸새
- 나. 선박검사관은 수중검사 전에 검사준비 사항, 사용장비의 작동상태, 각종 측정 장비의 검정·교정 상태 및 잠수부의 자격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다. 선박검사관은 본선에 대한 상황을 사전에 청취하고 잠수부가 잠수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할 사항 및 측정사항 등 필요한 검사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라. 잠수부는 선박검사관 입회하에 수중검사를 하여야 하며, 선박소유자(선박소유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해당 수중검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마. 잠수부는 수중검사 시 선박검사관과 서로 통신을 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바. 선박검사관은 수중사진 촬영, 수중비디오 촬영 또는 모니터 등에 따라 검사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사. 잠수부는 수중검사가 끝나면 다음 사항이 포함된 수중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선박소유자와 선박검사관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선박검사관은 검사결과를 선박소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일반사항

가) 선박 요목

나) 검사 일정

2) 선박 상태

3) 해상 상태

4) 수중검사업체 및 수중검사자

5) 수중검사장비 명칭

6) 검사 내용

7) 검사 결과

3. 수중검사를 수행하는 요원의 자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잠수기능사 자격을 받은 자로써 수중검사를 수행하는 보조원으로 1년 이상의 경력(최소 10 회 이상의 수중검사를 수행한 것을 말한다)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검사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제31조제9항 관련)

1. 검사준비사항 중 추진축계의 발출검사준비의 조정은 다음에 따른다.
 - 가. 제1종 축 : 전회의 발출검사 완료일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회의 탐상시험방법이 자분탐상시험 또는 초음파탐상시험에 따른 방법으로 집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회의 발출검사 완료일부터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제2종 축 : 전회의 발출검사 완료일부터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탐상시험방법은 자분탐상시험 또는 초음파탐상시험에 따른 방법에 따른다.
 - 다. 스테인레스강 또는 이와 동등한 비자성체재료의 프로펠러축계 및 지름 100밀리미터 미만의 제2종 추진축계에 대하여는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액체탐상시험으로 할 수 있다.
 - 라. 총톤수가 10톤 미만인 선박(여객선은 제외한다)의 프로펠러축계의 선미관 후부(後部) 또는 스트럿베어링 내면 상부와 프로펠러축과의 간격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길이 이하인 경우에는 별표 10 제2호나목 및 별표 11 제1호나목2)에 관한 준비를 각각 생략할 수 있다.
 - 1) 프로펠러축의 지름이 23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6밀리미터
 - 2) 프로펠러축의 지름이 230밀리미터 초과 30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8밀리미터
 - 3) 프로펠러축의 지름이 30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9.5밀리미터
2. 검사준비사항 중 기관개방검사와 관련한 별표 10의 정기검사준비사항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검사하여 5년 주기 내에 완료되도록 하는 검사(이하 "기관계속검사"라 한다)의 방법을 선박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10의 정기검사준비사항 및 별표 11의 중간검사준비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기관계속검사 방법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가. 기관계속검사(CMS : Continuous Machinery Survey) 방법
 - 1) 일반사항

기관계속검사 방법은 여객선이 아닌 선박에 설치된 기관에 대하여 적용(비자향선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특별히 승인한 것 외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하며, 반드시 정기적검사 시에 시행할 필요는 없고 선박소유자가 검사준비한 때에 수시로 임시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검사시기를 초과한 항목에 대한 검사는 차기 정기적검사 시기를 초과할 수 없다.
 - 가) 검사의 신청

기관계속검사 방법을 적용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기관계속검사 수검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나) 기관계속검사 수검목록

기관계속검사를 처음으로 시행하는 경우 선박검사관(선박검사원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은 선박소유자가 제출한 기관계속검사 수검계획서를 참조하여 기관계속검사 수검목록을 작성하고, 이후 기관계속검사를 시행한 경우 해당 항목란을 수정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송부한다. 선박소유자는 최근의 기관계속검사 수검목록을 본선에 보관하고 선박검사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수검계획서

(1) 선박소유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 수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원칙적으로 기관계속검사 대상 전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나) 검사의 개시 시기는 최초 정기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다음 검사로 하고 다음 회의 정기검사 시기에 완료되도록 함

(다) 매년 검사하는 항목 수는 거의 균등하게 할 것

(2) 위 (1)에 정한 수검계획서는 본선의 기관보수정비계획서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이 수검계획서는 시행과정에서 보수정비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2) 기관계속검사 적용대상 기관 및 검사요령

가) 기관계속검사 적용대상 기관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계속검사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정기적검사시에 행하여야 한다.

- (1) 주기관의 크랭크 개폐량의 측정 및 거치볼트의 점검
- (2) 증기관장치
- (3) 각종 안전장치의 효력 및 성능시험
- (4) 예비품
- (5) 기관구역무인화선의 효력시험

검사 항목	세부 사항
1 주기 디젤기관	실린더커버, 실린더라이너, 피스톤(피스톤핀 및 피스톤로드를 포함한다), 크로스헤드 (핀, 베어링 및 가이드를 포함한다), 연접봉, 크랭크 축 및 베어링, 캠축 및 구동장치, 과급기, 소기펌프 또는 블로어, 공기냉각기, 부속 중요 펌프(윤활유, 연료유, 냉각수)
2 주기 증기터빈	터빈 로터, 블레이드, 베어링, 케이싱, 노즐, 노즐밸브, 조종밸브
3. 보조기관	발전기(비상용은 제외한다) 및 중요 보기를 구동하는 보조기관을 주기에 준하여 검사

나) 기관계속검사 적용대상 기관의 검사방법

(1) 중요 보기가 2대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간격으로 교대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발전기 구동 내연기관 및 빌지펌프 등은 가능한 한 정기 및 중간검사 시에 시행하도록 한다.

(2) 각 대상기관별 검사간격은 5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3) 검사한 개소에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는 상세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다) 기관장이 점검한 기관에 대한 확인검사

기관의 보수 및 유지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선박의 경우 선내 보수 작업으로 항해 중에 개방하여 기관장이 점검한 기관에 대하여는 다음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 기관계속검사를 위한 개방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또한, 입항 중에 개방한 기관에 대하여도 그 항구에서 선박검사관에 의한 검사가 대단히 곤란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급할 수 있다.

(1) 기관장의 자격

기관장은 등록국 또는 선적국의 최상급 면허를 소지하고 있거나 기관장으로서 3년 이상 승선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같은 형태의 추진기관(주 내연기관 또는 주 터빈을 말한다)을 갖는 선박에 적어도 1년 이상 승선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확인검사

기관장에 의하여 점검된 기관은 원칙적으로 점검일부터 5개월 이내에 선박검사관에 의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작동상태에서 기관을 검사한다.

(나) 기관 Log book의 관련 기재사항 또는 정비기록(인정 가능한 전산기록 등을 말한다)을 조사하고 점검을 시행한 기관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다) 기관장은 점검시기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선박검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장의 서명 및 면허장번호

(2) 점검 연월일 및 장소

(3) 점검 항목 및 결과

(라) 선박검사관이 기관장보고서 및 기관의 현상을 조사한 결과 개방하여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개방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3) 기관장 점검의 대상기관

기관장 점검의 대상기관 및 대상제외 기관은 다음 표에 따른다. 다만, 기관장 점검 대상기관 중 주 내연기관의 각 부품 및 주 발전기 구동용 내연기관에 대하여는 기관계속검사 2순회 중 적어도 1순회 이상은 선박검사관에 의한 개방검사가 시행되어야 한다.

기관장 점검 대상기기	기관장 점검 대상 제외 기기
1. 주 내연기관(다만, 우측란 1항 항목은 제외한다)	1. 주 내연기관의 크랭크축 및 베어링, 크랭크핀 볼트 및 캠축 구동장치
2. 보조 내연기관(다만, 비고란에 제시하는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증기터빈(주, 보조)

※ 비고 : 보조 내연기관의 기관장 점검은 다음에 따른다.

1. 기관을 개방하고 모든 실린더, 실린더라이너, 실린더커버, 부속밸브, 피스톤, 피스톤링, 연접봉과 상하베어링, 피스톤핀, 캠축 구동장치, 과급기, 공기냉각기, 크랭크케이스와 도어, 기관거치 볼트, 크랭크케이스 과압 방지장치에 대하여 검사되어 있을 것

2. 모든 메인베어링의 상반부를 개방하고 하반부 메탈은 1, 2개를 들어내어 검

사되어 있을 것

3. 크랭크 핀 및 저널의 균열 유무가 검사되어 있을 것. 특히 필릿부와 유공, 오일 그루브의 부근을 주의하고 필요하면 액체침투탐상법에 의한 점검을 시행할 것
4. 크랭크 암의 개폐량을 측정하고 기록되어 있을 것
5. 실린더라이너는 마모량을 측정하고 기록되어 있을 것
6. 부속의 윤활유 냉각기, 기관부착의 윤활유 펌프나 냉각수 펌프 등이 개방점 검되어 있을 것
7. 안전장치의 작동이 양호하다고 확인되어 있을 것
8. 크랭크 핀볼트의 사용시간이 기록되어 있을 것

라) 기관계속검사 방법의 취소

선박소유자가 기관계속검사 방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취급하며, 기관계속검사가 이 방법대로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관계속검사 방법의 적용을 취소할 수 있다.

- (1) 다음 정기검사 이전에 그 검사 간격이 5년을 초과하는 기관계속검사 대상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지난번 검사일부터 5년째의 시점 또는 그 이전에 그 기기들의 검사를 시행한다.
- (2) 다음 정기검사를 할 때에는 정기검사에서 요구되는 모든 항목의 검사를 시행한다.

3) 기관계속검사 시 기관의 일련번호 부여방법

동일 기관이 2대 이상 비치된 경우의 일련번호 부여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가) 현존선의 경우 원칙적으로 각 기관의 명패(Name Plate) 번호 또는 본선에서 사용하는 번호와 통일시킨다.

나) 본선의 기관번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신조선에서 아직도 기관의 번호 배열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배열하도록 선박소유자 또는 조선소에 권유하여 이 부여 방법과 일치하도록 한다.

- (1) 우현에서 좌현으로
- (2) 선수에서 선미로
- (3) 위에서 아래로

나. 최초 정기검사(또는 제1회 정기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시의 기관계속검사 방법 적용

- 1) 기관계속검사는 원칙적으로 최초 정기검사 완료 후 다음 검사 시부터 시작하여 다음 회의 정기검사에서 완료하도록 되어있으나 선박소유자의 요청이 있고 또한 선박검사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초 정기검사 시부터 기관계속검사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정부 등에서 실시한 검사사항을 고려하여 다음 검사 시에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 시행하고 검사보고서에는 기관계속검사 적용선박임을 반드시 명확히 적는다. 만일 다음 검사 시에 반드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사항란에 기입한다.
- 2) 현존선으로서 새로 기관계속검사 방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령에 따른다.

가) 정기검사 후 첫번째의 중간검사 또는 그 이전의 임시검사 시기부터 기관 계속검사로 전환하는 경우는 즉시 정규순환으로 바꿀 수 있다.

나) 정기검사 후 첫 번째의 중간검사와 두 번째 중간검사 사이에 전환하는 경우는 위 가)와 같이 취급한다.

다) 정기검사 후 두 번째의 중간검사 시기부터 제1종 중간검사 시기로 전환하는 경우는 다음 회의 정기검사까지에 모두 마친 후에 즉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정기검사 후 제1종 중간검사 또는 그 이후에는 전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검사 준비사항 중 그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최초의 정기검사를 할 때에 차용한 선박과 제등록 선박(도입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별표 10의 정기검사 준비사항 중 제1호타목·제2호사목·제4호나목·제5호나목·제7호다목·제8호다목·제9호가목·제10호가목·제11호나목 및 제12호다목의 검사준비를 생략한다.

나.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할 때에 중전 법 제6조에 따른 제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별표 10 정기검사준비사항 중 제1호과목과 하목의 압력시험의 검사준비를 면제한다.

다.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선외기(船外機)가 설치된 선박(여객선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별표 10 제1호가목·다목 및 라목에 따른 선체에 관한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0 제12호에 따른 복원성시험에 관한 준비를 생략할 수 있다.

- 1) 여객선을 제외한 선박으로서 같은 조선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승인된 도면에 따라 건조되는 같은 형태의 후속 선박들에 대하여 경하중량 및 길이 방향의 무게중심위치(LCG) 산정을 위한 시험(이하 "경하중량산정시험"이라 한다)을 한 결과 선행 호선과의 경하중량 또는 LCG의 차이가 다음 조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하중량(LWT) 차이		길이방향 무게중심 위치(LCG) 차이
선박의 길이(L) 50미터 이하	2.0퍼센트 LWT	0.5퍼센트 L
선박의 길이(L) 160미터 이상	1.0퍼센트 LWT	
선박의 길이가 중간인 경우 보간법에 따른다.		

- 2) 선박의 주요 치수의 변경 없이 선박용물건의 증설·탑재·철거 등으로 경하중량 및 중심의 위치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를 하는 경우에는 경하중량 및 무게중심 위치(LCG 및 VCG)의 변화를 정확하게 계산한 경하중량산정표에서 경하중량의 증·감량이 기존 경하중량의 2.0퍼센트 또는 2톤 중 큰 값 미만이거나, LCG의 차이가 1.0퍼센트 LBP 미만인 경우

- 3) 제등록, 용도변경, 도입·차용한 선박으로서 승인받은 복원성자료가 있는 경우로서 복원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가 없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갑판에 개스킷(Gasket: 누설방지재) 불이 수밀강제덮개(물이 통과하는 것

을 막는 강제 덮개)로 폐쇄되는 작은 출입구만을 가지는 폰툰부선(선박을 정박할 수 있도록 수면 위에 인공적으로 설치한 부선) 또는 KG의 값이 갑판상면보다 낮다고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 폰툰부선에 있어서 KG의 값을 갑판상면까지 한 경우로서 해당 부선에 대한 복원성 규정에 적합한 경우, 이 경우 경하중량 및 LCG의 값은 경하중량산정을 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마.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여객선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선체 내부상태 및 주기관·축계·보조기관 등의 작동상태를 검사한 결과 양호한 경우 별표 11의 중간검사준비사항 중 제1호가목(별표 10의 제1호가목 및 너목은 제외한다), 나목 1) 및 2), 다목(별표 10의 제3호라목 및 마목은 제외한다) 및 라목의 검사준비를 생략할 수 있다.

바. 기관을 들어내어 전부 개방하지 아니하고는 크랭크축 등의 검사를 시행하기 곤란한 특수한 구조(고속기관 등)의 주기관, 동력전달장치 또는 보조기관(범선에 설치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정비 및 작동상태의 검사와 운전시간 등을 고려한 결과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개방검사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범선에 설치된 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개방검사 준비의 면제는 별표 10의 정기검사준비사항에 따라 개방검사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여객선: 5년 또는 기관제조자가 권고하는 개방 시기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 다만, 정기검사준비사항에 따라 개방검사를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시점에서 기관가동시간이 5,00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대행검사기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검사를 실시하여 양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기관가동시간 7,000시간 이내(기관제조자가 권고하는 개방시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에서 1년씩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가) 기관제조자가 권고하는 기관가동시간에 따른 점검항목에 대한 검사

나) 내시경을 통한 연소실검사, 실린더내 압력계측, 시간당 연료소모량 계측 및 총사용연료량 계측 등 기관제조자가 권고하는 방법에 따른 기관상태 검사

다) 해상 시운전

2)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여객선은 제외한다) : 10년

3) 1) 및 2) 외의 선박 : 8년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제조자의 정비지침에 따라 기관에 대한 정비 및 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제조자가 권고하는 개방 시기. 이 경우 여객선에 대한 개방검사 준비의 면제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사. 검사에 불합격 처리된 선박을 6개월 이내에 재검사 신청한 경우 지난 번 검사(불합격 처리된 검사를 말한다) 시 합격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검사준

비를 면제할 수 있다.

아. 강화플라스틱(FRP) 선체 건조를 할 때에 사용재료, 건조방법 등이 동일한 경우에는 최초의 건조분을 제외하고는 건조 전 재료시험을 생략할 수 있으며, 소형선박의 강화플라스틱 선체 건조를 할 때에 건조용몰드, 사용재료 및 건조방법 등이 동일한 경우 최초의 건조분을 제외하고는 잘라 낸 재료 시험의 준비를 면제한다.

자.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용물건이 형식승인 대상품목으로서 검사신청 이전 최근 2년 동안 매년 2회 이상 형식승인시험기관의 환경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용물건에 대한 환경시험의 준비를 면제한다.

차. 선박용물건(규칙 제4조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의 예비검사를 할 때에 외국정부의 검사 등을 받은 것 또는 ISO9000시리즈의 인증을 받은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부품으로서 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재료시험 및 그 부품에 대한 검사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카. 개조, 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예비검사를 할 때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개방검사, 비파괴검사 및 효력시험 외의 검사준비를 면제한다.

1) 다른 선박에 사용되었던 선박용물건(예비검사의 대상범위에서 제외되는 선박용물건으로서 다른 선박에 설치되어 검사를 받아오던 것은 제외한다)

2) 선박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을 선박용으로 구조변경하여 선박에 설치하려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용물건

가) 총톤수 5톤 미만인 선박(여객선은 제외한다)으로서 호소·하천 및 항내의 수역 안에서 항해하는 선박에 설치하려는 주기관

나) 주기관을 제외한 것으로서 출력 220킬로와트(300PS) 미만인 내연기관

다) 삭제 <2010.11.18>

타. 삭제 <2010.11.18>

파. 선외기 및 선내외기의 예비검사를 할 때에 동력전달장치 및 축계장치는 해당 기관의 단일조립 완성품으로 간주하며, 외국정부의 검사를 받은 것 또는 ISO9000시리즈의 인증받은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것에 대하여는 효력시험 외의 검사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하. 여객선을 제외한 선박에 설치된 주기관(동력전달장치를 포함한다) 및 보조기관으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개방검사의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0에 따른 개방검사를 받은 날부터 36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전의 개방검사 시 크랭크축에 대한 비파괴검사를 자분탐상시험 또는 초음파탐상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을 것

2) 정비 및 작동상태의 검사결과가 양호할 것

거. 선외기가 설치된 선박(여객선은 제외한다)으로서 해당 선외기의 정비·작동 및 운전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외기에 대해서는 별

표 10 제2호나목 및 별표 11 제1호나목1)·2)에 관한 준비를 각각 면제할 수 있다.

너. 별표 10 제1호나목 및 별표 11 제1호가목(별표 10 제1호나목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타(舵) 베어링(bearing)부 중 핀틀(pintle) 베어링 및 넥 베어링의 마모도가 각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를 들어 올리거나 빼내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프로펠러축을 뽑아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핀틀 베어링의 마모도

가) 핀틀의 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3밀리미터 이내

나) 핀틀의 지름이 50밀리미터 초과 10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 5밀리미터 이내

다) 핀틀의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0.01D$ ["D"는 타두재(舵頭材) 지름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4밀리미터를 합한 값 이내

2) 넥 베어링의 마모도: $0.01D$ 에 2밀리미터를 합한 값 이내

더. 길이 24미터 미만인 스포츠용·레저용 선박의 선체에 대한 건조검사나 그 선박에 탑재되는 선박용물건에 대한 예비검사를 할 때에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효력시험 외의 검사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4. 제출서류의 일부를 조정 또는 면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선박검사신청 시 제출하는 선박검사증서는 선박이 향해 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검사 착수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나.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에 관한 규정 중 복원성에 있어서 특수선형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여객선 및 부선에 대하여는 별표 7의 제2호마목 2) 및 3)의 서류를, 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의 선박 또는 개조에 따라 복원 성능이 양호하게 개선되는 선박에 대하여는 별표 7의 제2호마목 4)의 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다. 이미 승인받은 설계도면(건조 당시의 시설기준에 변경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동일업체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선박용물건(그 부품을 포함한다)을 제조하려는 경우 또는 한국산업규격(이하 "KS규격"이라 한다)에 따른 선박용물건을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제조사양서 및 별표 7 제4호의 서류제출을 면제한다. 이 경우 예비검사신청서 비고란에 승인받은 설계도면의 내역 또는 KS규격번호를 기재토록 한다.

라. 선박용물건의 수리(기존 설비중 그 부품을 신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정비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제조사양서 및 별표 7 제4호의 서류제출을 면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카탈로그 등 참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5. 선박의 주요 치수의 변경없이 선박용물건의 중설·탑재 또는 철거 등으로 인한 중량 및 중심위치의 변화량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복원성자료에 대하여는 승인하지 아니한다.

가. 여객선을 제외한 선박으로서 상갑판 상부의 증설·탑재 또는 그 하부의 철거 등으로 경하상태의 KG가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중량증감량이 경하중량의 0.5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상갑판 하부의 증설·탑재 또는 그 상부의 철거 등으로 KG의 하강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중량증감량이 경하중량의 1.5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 여객선이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의 제·개정으로 선박용물건을 증설·탑재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개정 2023. 7. 11.>

선체두께 측정범위 및 측정방법(제31조의2제1항 관련)

1. 두께측정의 범위

가. 선령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선박

선수부, 기관구역 및 선체중양부 0.4L 간의 각각의 1단면에 대하여 선체 주요부재의 판두께를 측정한다.

나. 선령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선박

선수부 및 기관구역의 1단면과 선체중양부 0.4L 간의 3단면에 대하여 선체 주요부재의 판두께를 측정한다.

다. 선령 30년 이상의 선박

위의 나목의 측정범위에 선미부 1단면을 추가하여 측정한다.

2. 두께측정방법

가. 두께측정 실시 전에 선박검사관, 선박소유자 및 두께측정업체가 참석한 회의를 개최하여 두께측정 준비사항, 두께측정의 범위, 두께측정 요원의 자격, 장비의 검교정 및 그 밖의 세부사항 등을 결정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두께측정 회의록을 작성(선박검사관이 두께를 측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다.

- 1) 회의일정 및 참석자
- 2) 측정일정, 조건 및 범위
- 3) 식모한도
- 4) 검사원, 두께측정 요원 및 선박소유자와의 연락 체계
- 5) 두께측정업체가 제공하여야 할 서류
- 6) 특기사항 등

나. 두께측정은 각 단면당 10포인트 이상을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점의 수는 선박의 규모, 선령 및 선체 노후화 정도에 따라 적절히 증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선체중양부 0.4L 간의 측정범위에 기관구역 길이의 100분의 50 이상이 중첩될 경우 기관구역은 선체중양부 0.4L 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유조선산적화물선 또는 산적액체위험물운송선에 대하여는 화물구역에 있는 평형수출수선과 만재출수선 사이의 모든 선측 외판에 대하여 나목에 따른 측정점 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추가하여 측정한다.

라. 두께측정업체가 실시하는 경우 선박검사관은 두께측정의 전 과정에 대하여 통제 및 현장감시를 실시하고 전 측정과정의 100분의 3 이상(종강도 부재 100분의 2 이상, 그 밖의 부재 100분의 1 이상)을 참관해야 한다. 다만, 선박검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관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3. 식모한도

선체 주요부재의 쇠모한도는 다음에 따른다. 다만, 쇠모한도를 초과한 경우로서 측정두께가 규정두께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재명칭	쇠모한도
1. 외판, 강력갑판, 강력갑판 및 현측 후판상의 종통부재, 디프탱크의 격벽판, 내저판	원래 두께의 20퍼센트 + 1밀리미터 이내
2. 이중저능판, 거더, 큰 골재의 웹 및 면재	원래 두께의 25퍼센트 이내
3. 작은 골재의 웹면재 및 브래킷, 수밀격벽판, 유효갑판, 창구덮개, 창구보	원래 두께의 30퍼센트 이내
4. 창내능골의 웹 및 브래킷	원래 두께의 25퍼센트 또는 2.5밀리미터 중 큰 값 이내

비고

- 작은 골재란 다른 보강재를 지지하지 아니하는 골재부재를 말한다.
- 원래두께는 도면상의 두께를 말하며, 도면상의 두께와 본선의 두께가 다를 경우 본선의 두께를 말한다.

4. 두께측정 결과의 조치 및 기록 등

가. 두께측정 결과가 제3호에 따른 선체 주요부재의 쇠모한도를 초과하거나 과도한 부식이 발견된 부분에 대하여는 신환 등 수리하여 쇠모한도 이내가 되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 “과도한 부식”이란 과도한 부식이 있다고 의심되는 부위의 측정치와 의심되는 부위가 아닌 구역의 가장 큰 측정치를 비교하여 그 차이가 제3호에 따른 쇠모한도를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나. 측정 결과는 측정자 및 담당검사관이 서명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의3] <개정 2023. 4. 25.>

두꺼측정지정업체의 지정 취소 또는 측정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제31조의3제7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업무정지 처분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나.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목 본문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4조제5항제1호	지정취소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체두꺼를 측정한 경우	법 제14조제5항제2호	지정취소
다. 두꺼측정지정업체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법 제14조제5항제3호	지정취소
라.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14조제5항제4호	업무정지 6개월
마.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선체두꺼 측정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제5항제5호	업무정지 3개월
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제5항제6호	업무정지 2개월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의4] <개정 2021. 6. 30.>

복원성 기준(제32조제1항 관련)

구 분	복원성 기준
여객선	변경이나 개조 후 기선 ¹⁾ 으로부터 경하상태 ²⁾ 에서의 무게중심까지의 수직거리가 변경이나 개조 전보다 늘어나지 아니할 것. 다만,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의 제·개정 또는 새로운 적용 등에 따른 선박시설의 변경이나 개조 및 구명설비와 소방설비의 변경이나 개조에 따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객선 이외의 선박	변경이나 개조 후 경하상태에서 액체의 자유표면의 영향을 고려한 무게중심으로부터 횡메타센터까지의 높이(GoM)가 영(0) 이상일 것. 다만, 법 제28조에 따른 복원성의 유지 의무가 없는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선을 말한다. 2) 선박에 사람, 화물, 연료, 윤활유, 선박평형수, 탱크안의 청수(淸水) 및 보일러수, 소모저장품과 여객 및 선원의 휴대품을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의5] <신설 2020. 6. 17.>

변경허가의 대상(제32조제2항 관련)

1. 선박의 길이·너비·깊이의 변경
2. 선박의 용도 변경(법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설비기준의 적용이 달라지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선박의 추진용으로 사용되는 원동기의 변경 또는 개조. 다만, 동일한 형식 및 출력의 원동기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조타설비의 변경 또는 개조
5. 구멍뿔목, 구멍정 또는 강하식탑승장치의 변경 또는 개조. 다만, 동일한 형식으로 교체하거나 제작일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설비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고정식의 가스·포말·가압분무·불활성가스 소화장치 및 스프링클러 소화설비의 변경 또는 개조
7. 여객선의 경우, 여객실의 변경 또는 개조. 다만, 구조적 변경이 아닌 내부장식 변경 등의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비 고

1. 항해구역의 변경 등으로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의 적용에 변경이 있어 구멍뿔목, 구멍정 등 선박시설을 제거한 경우는 선박시설의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객선 외의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선박은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가. 변경이나 개조 후 경하상태(선박에 사람, 화물, 연료, 윤활유, 선박평형수, 탱크안의 청수(淸水) 및 보일러수, 소모저장품과 여객 및 선원의 휴대품을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선으로부터 무게중심까지의 수직거리가 변경이나 개조 전보다 늘어나지 않는 경우
 - 나.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이 제정·개정되어 그 기준에 맞춰 선박시설을 변경 또는 개조하는 경우(제32조제1항에 따른 복원성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다. 법 제28조에 따른 복원성 유지 대상 선박이 아닌 경우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6] <개정 2013.3.24>

형식승인 시험비용의 산출기준(제38조제2항 관련)

1. 장비손료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frac{(\text{상각율} + \text{수리율}) \times \text{장비가격}}{\text{연간표준장비가동시간} \times \text{내용연수}} \times \text{장비가동시간}$$

가. 상각율은 0.9로 한다.

나. 수리율은 0.3으로 한다. 다만, 제동시험 및 마찰계수시험을 하는 장비의 수리율은 0.5로 한다.

다. 장비가격은 해당 장비의 구입가격으로 한다.

라. 연간표준장비 가동시간은 2천 시간으로 한다. 다만, 제동시험 및 마찰계수시험을 하는 장비의 연간표준장비 가동시간은 1천 시간으로 한다.

마.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바. 장비가동시간은 해당 시험을 위하여 장비를 실제로 가동한 시간으로 한다.

2. 공공요금 및 인건비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출한다.

가. 공공요금 및 인건비 산출 단위량의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공공요금은 정부가 고시하는 요금을 적용한다.

다. 인건비는 정부가 고시하는 노임단가 또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기술용역단가를 적용한다.

3. 재료비는 해당 형식승인시험기관이 사용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형식승인을 받은 자와 지정시험기관이 보관하여야 하는
선박용물건(제43조 관련)

1. 구명설비

가. 구명조끼(팽창식 구명조끼를 포함한다)

나. 방수복

다. 수동 이탈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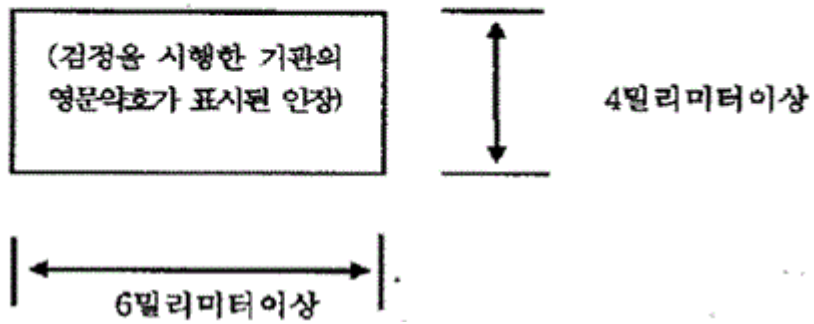
라. 레이더 반사기

2. 소방설비

가. 개인장구 중 방열복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8]

검정의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제44조제3항 관련)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9] <개정 2023. 7. 11.>

형식승인 및 지정시험기관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

(제4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효력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그 효력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가. 형식승인에 대한 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1호	형식승인 취소
2) 검정을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2호	효력정지 6개월
3)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2호의2	효력정지 2개월
4) 제조 또는 수입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3호	효력정지 6개월
5)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4호	효력정지 6개월
6) 법 제75조에 따른 보고·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5호	효력정지 2개월

나.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3항제1호	지정취소
2) 시험에 관한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19조제3항제2호	지정취소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법제처	법 제19조제3항제3호	지정취소

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형식승인시험의 오차·실수·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9조제3항제4호	효력정지 6개월
5)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시험의 실시를 거부한 경우	법 제19조제3항제5호	효력정지 3개월
6)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3항제6호	효력정지 2개월

지정사업장의 지정기준(제47조제1항 관련)**1. 지정제조사업장의 지정기준****가. 다음의 시설을 갖추는 것**

- 1)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제조 또는 자체검사에 필요한 작업장
- 2) 제조에 필요한 재료·부품의 보관시설 및 제조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보관하기 위한 가공 전후의 일시보관 장소

나. 다음의 인원을 갖추는 것

- 1)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체검사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 1명 이상
 - 가) 해당 분야의 제조경력 또는 자체검사경력이 5년 이상(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인 자
 - 나) 법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서의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다)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3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고 해당 분야의 제조 또는 승선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2) 자체검사 업무의 감독을 위한 관리책임자로서 다음의 자격이 있는 자 1명 이상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나)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3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고 해당 분야의 제조경력 또는 승선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다) 해당 분야의 제조경력 또는 자체검사경력이 5년 이상(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인 자로서 자체검사의 책임자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라) 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또는 법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서의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3) 제조에 종사하는 인력**다. 제조작업을 담당하는 조직으로부터 독립된 자체검사 조직을 갖추는 것****라. 자체검사설비의 교정검사에 관한 기준을 정한 규정이 있을 것****마. 다음의 법령 및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규정이 있을 것**

- 1)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제조 및 자체검사에 필요한 도면 및 관련 법령(국제협약을 포함한다)
- 2) 제조작업 및 자체검사에 관한 기록

3) 제조설비의 관리에 관한 기록(일상점검, 정기점검, 보수·유지의 방법, 계량관리 및 관리조직을 포함한다)

4) 배상청구 처리 및 제품의 품질보증

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설계 및 제조공정, 재료 및 부품, 자체검사 및 외주 등에 관한 관리기준이 있을 것

사. 다음의 사항을 갖출 것(팽창식 구명설비를 제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제조에 필요한 적정수준의 재료 및 교환부품의 확보

2) 사용설명서 및 정비방법과 그 변경사항에 관한 기준의 비치

3) 정비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 제도의 설정

4) 지정정비사업장의 정비능력을 인정하는 절차서 및 인정양식의 구비(팽창식 구명뗏목을 제조하는 업체에만 한정한다)

아. 지정제조사업장으로 인정받으려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고 지정제조사업장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1년 동안 1회 이상 검정을 받거나 예비검사에 합격한 실적이 있을 것. 다만, 같은 품목으로서 형식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정정비사업장의 지정기준

가. 다음의 시설을 갖출 것. 다만, 구명뗏목의 경우에는 별표 24 제1호의 시설로 한다.

1)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정비 또는 자체검사에 필요한 작업장

2) 정비에 필요한 재료·부품 및 정비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보관하기 위한 장소

나. 다음의 인원을 갖출 것

1)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체검사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 1명 이상

가) 해당 분야의 제조·정비경력 또는 자체검사경력이 5년 이상(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인 자

나) 법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서의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다)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3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고 해당 분야의 제조·정비 또는 승선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자체검사 업무의 감독을 위한 관리책임자로서 다음의 자격이 있는 자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3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고 해당 분야의 제조·정비 또는 승선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다) 해당 분야의 제조·정비 또는 자체검사 경력이 5년 이상(신청일을 기준

으로 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인 자로서 자체검사의 책임자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라) 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또는 법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서의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3) 다음 요건에 적합한 정비 인력(팽창식 구명설비를 정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팽창식 구명설비의 제조사업장 또는 정비사업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제조자가 시행하는 팽창식 구명설비의 정비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비기술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정비기술자 2명 이상

나) 정비기술자의 지도를 받아 정비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원 2명 이상

4) 3)가)에 따른 정비기술자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정비된 팽창식 구명설비를 선박에 설치하는 것을 확인하는 탑재확인자 1명 이상. 이 경우 탑재확인자는 3)가)에 따른 정비기술자가 겸직할 수 있다.

다. 정비작업을 담당하는 조직으로부터 독립된 자체검사 조직을 갖출 것

라. 자체검사 설비의 교정검사에 관한 기준을 정한 규정이 있을 것

마. 다음의 법령 및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규정이 있을 것

1)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정비 및 자체검사에 필요한 도면 및 관련 법령(국제협약을 포함한다)

2) 정비작업 및 자체검사에 관한 기록

3) 정비설비의 관리에 관한 기록(일상점검, 정기점검, 보수·유지의 방법, 계량관리 및 관리조직을 포함한다)

4) 배상청구 처리에 관한 기준

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설계 및 정비공정, 재료 및 부품, 자체검사 및 외주 등에 관한 관리기준이 있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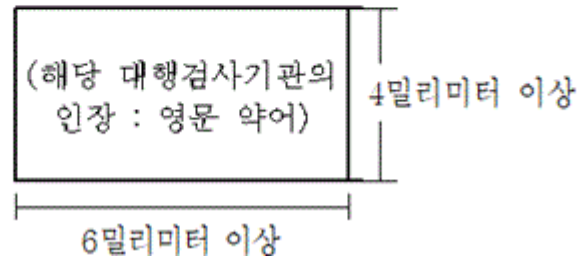
사. 다음의 사항을 갖출 것(팽창식 구명설비를 정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정비하고자 하는 팽창식 구명설비(팽창식 구명뗏목에 한한다)의 제조자 중 1곳 이상으로부터 정비능력 인증을 받거나, 제조자가 인정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거나 또는 제조자가 인정하는 정비지침서를 사용할 것

2) 제54조제5항에 따른 팽창식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를 발급받았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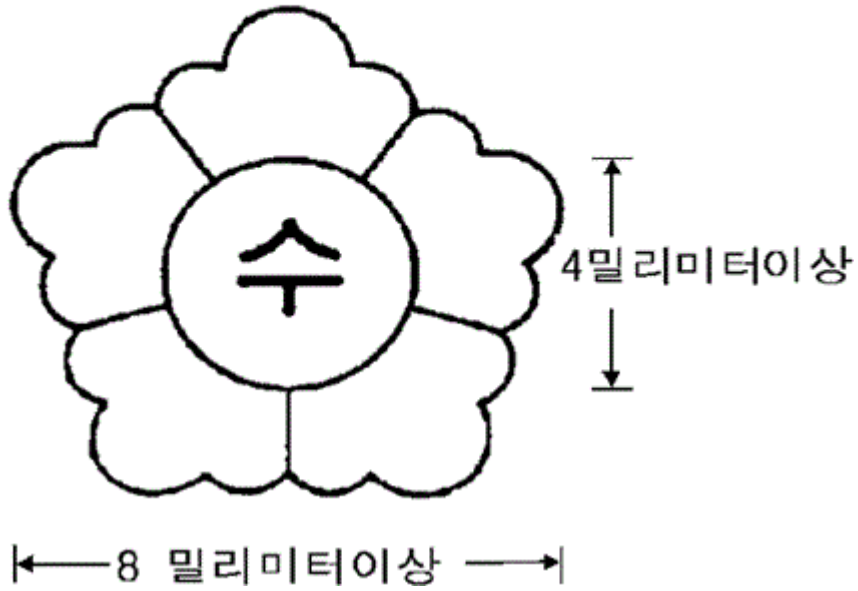
3) 지정정비사업장 지정 신청일부터 최근 2년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합격하였을 것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1]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 표시(제50조제3항 관련)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자체검사 합격표시(제51조 관련)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3] <개정 2015.7.15.>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처분내용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1호	지정취소
2. 제조하거나 정비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2호	지정취소
3. 유효기간이 경과한 선박용물건을 판매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3호	효력정지 6개월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정비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4호	효력정지 3개월
5. 해당 사업장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5호	효력정지 6개월
6.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6호	효력정지 6개월
7. 법 제75조에 따른 보고·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7호	효력정지 2개월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4] <개정 2021. 6. 30.>

평창식구명설비의 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

(제54조제4항 관련)

1. 시설

가. 작업장

- 1) 천장의 높이는 4.5미터 이상, 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정비하려는 구명뗏목을 펼쳤을 때의 바닥면적보다 클 것
- 2) 구명뗏목을 들어 올려 고정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 3)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어야 하며, 충분한 조명장치를 갖출 것
- 4)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 조절장치를 갖출 것
- 5) 환기장치를 설치할 것

나. 수세장

면적은 2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수세시설을 갖출 것

다. 누설 시험장

- 1) 면적은 25제곱미터 이상일 것
- 2) 바닥은 뗏목의 고무포를 손상시키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깔 것
- 3)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어야 하며, 충분한 조명장치를 갖출 것
- 4)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 조절장치를 갖출 것
- 5) 환기장치를 설치할 것

라. 정비한 구명뗏목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중으로 겹쳐서 저장하는 것을 금한다)

마. 부품 진열장

- 1) 공구·비품류 등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게 정비하여 놓을 수 있도록 선반식으로 되어 있을 것
- 2)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일 것

바. 사무실

면적은 15제곱미터 이상일 것

사. 위험물저장소

관계 법령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

2. 인원

가. 정비기술자

평창식 구명설비의 제작회사 또는 정비사업장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평창식 구명설비에 관한 정비기술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자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나. 작업원

정비기술자의 지도를 받아 정비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원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기구 및 비품류

가. 점검·정비를 위한 충분한 기구·예비품류

- 1) 수리·수세·분해 등을 위한 충분한 기구와 예비품을 비치할 것
- 2) 구명설비를 팽창 또는 수축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공기펌프(고압호스 및 연결관을 포함하여 청소·건조하기 위한 도구가 있을 것)
- 3) 구명설비의 주입구를 통해 불어넣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의 가스 등

나. 검사를 위한 기구

1) 누설시험을 위한 기구

압력계(혈압계 수은주 300밀리미터 또는 수압계)·온도계·기압계(아네로이드형), 공기압축기 및 전동 송·배풍기

2) 가스용기검사를 위한 기구류

저울(측정가능무게 20킬로그램), 온수시험용 물탱크(용기 1개 이상의 수용이 가능한 것일 것) 및 용기내압 시험설비

3) 자동이탈장치 시험용구(팽창식 구명뗏목 또는 팽창식 구명부기의 경우로 한정한다)(하중 5킬로그램 및 하중 200킬로그램에서 시험할 수 있는 것일 것)

4) 그 밖의 습도계·10미터 줄자 등

4. 정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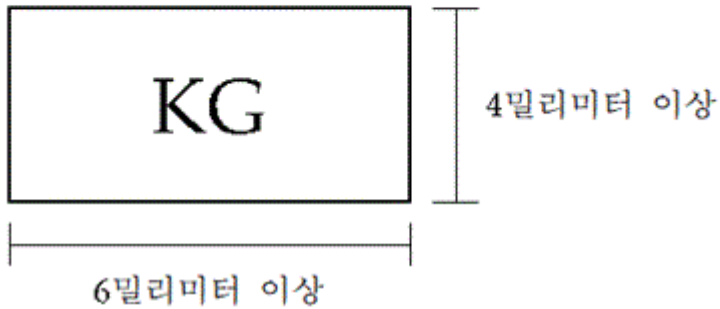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팽창식구명설비의 정비 기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확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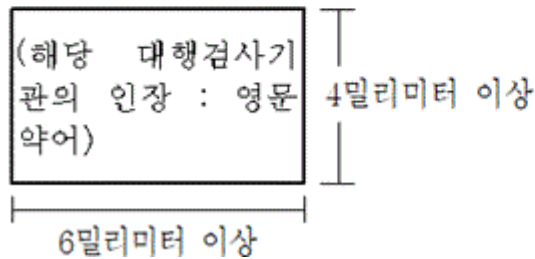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5] <개정 2019. 8. 20.>

예비검사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제54조제7항 관련)

1. 해양수산부장관의 합격표시



2.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합격표시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6] <개정 2018. 11. 20.>

예비검사의 준비사항(제54조제8항 관련)

1. 선체에 설치할 선박용물건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압력시험, 비파괴검사 및 하중시험의 준비를 할 것.
2. 기관에 설치할 선박용물건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비파괴검사, 용접시공시험, 평형시험, 압력시험, 효력시험, 축기시험, 도기시험 및 육상시운전의 준비를 할 것.
3. 배수설비, 조타·계선·양묘설비, 구멍·소방설비 및 거주설비에 설치할 선박용물건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압력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4. 항해용구에 설치할 선박용물건에 관한 준비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5. 하역 그 밖의 작업설비에 설치할 선박용물건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비파괴검사, 하중시험, 압력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6. 전기설비에 설치할 선박용물건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방수시험, 방폭시험, 완성시험, 절연저항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7. 승강설비에 설치할 선박용물건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하중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8. 컨테이너에 설치할 선박용물건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및 하중시험의 준비를 할 것.
9. 냉동설비에 설치할 선박용물건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방수시험, 압력시험, 기밀시험, 진공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10. 잠수설비의 내압동체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설비에 설치할 선박용물건에 관한 준비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검사준비를 할 것.
11. 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용물건에 관한 준비
별표 10 정기검사 준비사항 중 해당 선박용물건에 관한 검사준비를 할 것.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7] <개정 2013.3.24>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시험비용 산출기준 (제58조제3항 관련)

1. 장비손료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frac{(\text{상각율} + \text{수리율}) \times \text{장비가격}}{\text{연간표준장비가동시간} \times \text{내용연수}} \times \text{장비가동시간}$$

가. 상각율은 0.9로 한다.

나. 수리율은 0.3으로 한다. 다만, 제동시험 및 마찰계수시험을 하는 장비의 수리율은 0.5로 한다.

다. 장비가격은 해당 장비의 구입가격으로 한다.

라. 연간표준장비 가동시간은 2천 시간으로 한다. 다만, 제동시험 및 마찰계수시험을 하는 장비의 연간표준장비 가동시간은 1천 시간으로 한다.

마.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바. 장비가동시간은 해당 시험을 위하여 장비를 실제로 가동한 시간으로 한다.

2. 공공요금 및 인건비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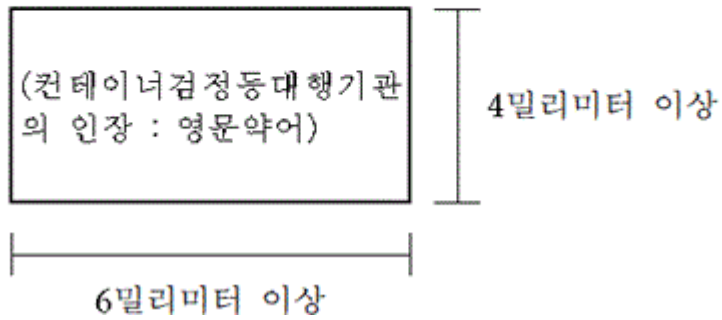
가. 공공요금 및 인건비 산출 단위량의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공공요금은 정부가 고시하는 요금을 적용한다.

다. 인건비는 정부가 고시하는 노임단가 또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기술용역단가를 적용한다.

3. 재료비는 해당 형식승인시험기관이 사용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8]

컨테이너 검정의 합격을 나타내는 확인표시(제59조제3항 관련)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9] <개정 2023. 7. 11.>

컨테이너형식승인 및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취소와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제62조의3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효력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그 효력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가. 컨테이너형식승인에 대한 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법 제23조의3제1항제1호	형식승인 취소
2) 컨테이너검정을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3조의3제1항제2호	효력정지 6개월
3) 컨테이너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의3제1항제3호	효력정지 2개월
4) 정당한 사유 없이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후 2년 이상 계속하여 컨테이너를 제조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의3제1항제4호	효력정지 6개월
5)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컨테이너가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3조의3제1항제5호	효력정지 6개월
6)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5조에 따른 보고·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경우	법 제23조의3제1항제6호	효력정지 2개월

나.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법 제23조의3제2항제1호	지정취소

정을 받은 경우	1호	
2) 형식승인시험에 관한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23조의3제2항제2호	지정취소
3)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23조의3제2항제3호	지정취소
4) 형식승인시험의 오차·실수·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신력을 상실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3조의3제2항제4호	효력정지 6개월
5)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시험의 실시를 거부한 경우	법 제23조의3제2항제5호	효력정지 3개월
6)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	법 제23조의3제2항제6호	효력정지 2개월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9의2] <신설 2023. 7. 11.>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인력, 시설 및 설비 등 기준(제65조의3제2항 관련)

1. 인력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검인력을 갖추는 것

-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하 이 표에서 “대학”이라 한다)의 조선·항해·기계·기관·용접·금속재료 등에 관한 학과(이하 이 표에서 “관련학과”라 한다)를 졸업(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한 후 컨테이너의 제조, 검사, 시험 또는 수리 등의 업무(이하 이 표에서 “관련업무”라 한다)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 2) 대학의 관련학과 외의 이공계 학과를 졸업한 후 관련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 3)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이하 이 표에서 “전문대학”이라 한다)의 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관련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 4) 공업계고등학교의 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5) 1)부터 4)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가목의 점검인력 중 안전점검 업무를 책임관리하고 점검기록을 작성·유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책임점검자 1명을 지정할 것

2. 시설 및 설비 등 기준

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컨테이너수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자본금 및 시설을 갖추는 것

나. 다음의 장비를 모두 갖추는 것

- 1) 컨테이너를 이동시키거나 들어 올릴 수 있는 장비
- 2) 요철 또는 부식부위가 구조적 강도에 미치는 정도를 점검하기 위한 장비
- 3) 골재 또는 판재의 구부러짐이나 변형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
- 4) 판두께의 치수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

비고: 장비의 위탁 또는 임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제2호나목에 따른 장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9의3] <신설 2023. 7. 11.>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처분의 기준(제66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사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그 사업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24조의4제1항제1호	사업등록 취소
나.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24조의4제1항제2호	사업정지 6개월
다.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의4제1항제3호	사업정지 2개월
라.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의4제1항제4호	사업정지 2개월
마.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안전점검 사업 수행 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24조의4제1항제5호	사업정지 6개월
바. 안전점검사업자가 사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에 안전점검사업을 계속한 경우	법 제24조의4제1항제6호	사업등록 취소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0] <개정 2020. 6. 17.>

무선설비의 설치기준(제72조제2항 관련)

무선설비의 종류 적용 선박	초단파대 무선설비(무선전화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	중단파대 또는 중단파대 및 단파대 무선설비(무선전화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	네비텍스 수신기	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EPIRB)	수색 및 구조 위치확인장치(SART 또는 AIS-SART)	양방향초단파대무선전화장치(2-way VHF)
가.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1					
나.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1)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300톤 미만의 것	1			1		
2)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300톤 미만의 것	1	1		1		
3) 총톤수 300톤 이상의 것	1		1	1	1	1
비고 1. 외국에서 같은 국가 내의 항구 간 또는 외국의 호소·하천 및 항내의 수역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으로서 해당 국가의 무선국허가를 받은 선박은 해당 국가의 관계 규정에 따른 무선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2. 중단파대 및 단파대무선전화를 설치한 선박은 중단파대무선전화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이 초단파대무선설비를 이용하여 위치보고 등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초단파대무선설비 외에 중단파대무선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선박안전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 기능을 갖춘 무선설비란 위의 무선설비가 통신망으로 제어되어 각 단말기끼리 신호충돌 없이 자동으로 위치가 보고되는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5. 위성휴대전화기를 설치한 수면비행선박은 중단파대무선설비 또는 중단파대 및 단파대무선설비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1] <개정 2021. 6. 30.>

하역설비에 대한 제한하중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 (제76조 관련)

1. 하역장치의 구조 및 강도 계산

가. 제한각도 및 제한반지름 등

- 1) 하역장치 중 데릭장치(데릭포스트, 스테이, 붐, 링플레이트, 아이플레이트, 클리트 등의 부착품과 윈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하중시험을 하는 때의 데릭붐의 수평면에 대한 각도를 제한각도로 하고, 지브크레인 하중시험을 한 때의 최대선회반지름을 제한반지름으로 하며, 그 밖의 하역장치는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제한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을 부하하는 경우 그 중요부분의 파괴강도에 대한 안전계수가 다음 표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구 분		안전계수
금속구조부	제한하중이 10톤 이하인 것	5
	제한하중이 10톤을 넘는 것	4
목 구조부		8
와 이 어 로 프		5

나. 하역장치의 구조 및 강도계산

- 1) 이 규정은 강제데릭장치로서 하역방법, 구조 및 배치가 통상적인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 2) 마스트 및 데릭포스트(이하 "포스트"라 한다)의 최상층 지지갑판 부분(이하 "기부"라 한다)의 바깥지름(d)은 다음 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포스트의 단면이 원형이 아닌 경우에는 최소바깥지름 또는 변을 d로 본다.

$$d = 5h \text{ (센티미터)}$$

이 식에서

h는 기부부터 토퍼브래킷까지의 포스트의 높이(미터)

3) 포스트기부의 단면계수

가) 스테이가 없는 포스트

- (1) 단면계수(Z)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값 이상일 것

$$Z = C_1 \cdot C_2 \cdot W \cdot O \text{ (세제곱센티미터)}$$

이 식에서

C_1 , C_2 는 다음 표에 따른 값. 이 경우 W가 같은 표에 따른 값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보간법에 따른다.

W	2 이하	3	4	5	6	7	8	9	10	15 이상
---	------	---	---	---	---	---	---	---	----	-------

(톤)										
C ₁	1.35	1.25	1.20	1.17	1.15	1.14	1.13	1.12	1.10	1.10
C ₂	125	120	117	115	114	113	112	111	110	89

W는 제한하중 (톤)

O는 데릭붐의 수평면에 대한 각도를 제한각도로 하는 경우의 선회반지름(미터)

- (2) 포스트의 선수측 및 선미측에 데릭붐을 설치하는 경우 선박의 길이방향의 축에 관한 단면계수(Z)는 (1)에 따른 값 또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값 중 큰 값 이상일 것

$$Z = (\sum C_2 \cdot W) \cdot O' \text{ (세제곱센티미터)}$$

이 식에서

$\sum C_2 \cdot W$ 는 포스트의 선수측 및 선미측 각각의 데릭붐에 대한 $C_2 \cdot W$ 값의 합

O'는 포스트의 중심으로부터 선측까지의 거리에 아우트리치를 더한 길이(미터)

C₂ 및 W는 각각 (1)에 따른 C₂ 및 W와 같다.

- (3) 데릭붐이 포스트외의 다른 독립된 구조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데릭붐의 단면계수는 (1) 또는 (2)에 따른 값에 다음 산식에 따른 값(α)을 곱한 것 이상일 것. 이 경우 (1)에 따른 계수 C₁을 1.0으로 할 것

$$\alpha = \frac{h}{h-h'}$$

이 식에서

h'는 기부부터 구스넥브래킷의 중심까지의 수직거리 (미터)

h는제2호에 따른 h와 같다.

나) 스테이가 있는 포스트

- 9)를 만족하는 스테이(이하 "스테이"라 한다)가 설치된 포스트기부의 단면계수는 가목에 따른 것에 다음 산식에 따른 값(β)을 감할 수 있다.

$$\beta = 10 \frac{h^3}{d_m^3} \cdot \sum R \text{ (세제곱센티미터)}$$

이 식에서

d_m는 포스트기부의 바깥지름 또는 변 (센티미터)

h는 2)에 따른 h와 같다.

$\sum R$ 은 각 스테이에 대하여 다음 산식에 따른 값을 합한 것

$$\sum R = (ds^2 \cdot a^2) / (\ell_0 \cdot \ell s^2)$$

이 식에서

d_s 는 스테어로 사용되는 와이어로프의 지름 (밀리미터)

l_s 는 스테어의 상하 양단사이의 길이(미터)

l_0 는 l_s 에서 다음 산식에 따른 값(γ)을 감한 길이(미터)

$$\gamma = 0.045d_s + 0.26 \text{ (미터)}$$

a 는 스테어의 상하 양단간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향으로 측정한 수평투영거리(미터)

- (1) 가) (1)에 따른 것에서 감하는 값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데릭뿔의 가동범위의 모든 방향으로 측정한 것 중 ΣR 의 값을 최소로 하는 방향
- (2) 가) (2)에 따른 것에서 감하는 값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횡방향

다) 킹포스트

균일한 단면의 포틀을 가진 킹포스트로서 데릭뿔이 포스트에 따라 지지되는 경우 기부 단면계수는 다음에 따른 것

- (1) 선박의 횡방향의 측에 관한 단면계수는 가) (1)에 따르는 것에 다음 계수를 곱한 것까지 감할 수 있다.

r 이 0.6 이상인 경우 0.7

r 이 0.6 미만인 경우 $1 - 0.5r$

이 식에서

r 은 포틀단면의 너비와 포스트기부의 선박의 길이 방향의 지름과의 비율

- (2) 선박의 길이 방향의 측에 관한 단면계수는 가) (1) 또는 (2)에 따른 것 중 큰 값에 다음의 계수를 곱한 값까지 감할 수 있다.

r' 가 0.3 이상인 경우 0.35

r' 가 0.3 미만인 경우 $0.5 - 5/3 \cdot r'^2$

이 식에서

r' 는 포틀단면의 길이와 포스트기부의 선박의 횡방향의 지름과의 비율

- (3) 좌우의 포스트 간격이 포스트 높이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에는 1) 및 2)에 따른 계수를 적당히 증가시킬 것

라) 사이드포스트

데릭뿔을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짧은 데릭포스트의 기부의 단면계수는 다음에 따른 것

- (1) 단면계수 (Z)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값 이상일 것

$$Z = 85 \frac{h'}{h - h'} W \cdot O \quad (\text{세제곱센티미터})$$

이 식에서

W 및 O 는 각각 (가) 1)에 따른 W 및 O와 같다.

h'는 3)가) (3)에 따른 h'와 같다.

h는 2)에 따른 h와 같다.

- (2) 포스트의 선수측 및 선미측에 데릭뿔을 설치하는 경우 선박의 길이 방향의 축에 관한 단면계수는 (1)에 따른 W 및 O 대신에 선수측 및 선미측의 데릭뿔에 대한 W의 합계와 가) (2)에 따른 O'를 사용하여 계산한 값 이상일 것

4) 기부를 제외한 부분의 치수

가) 포스트기부의 하방으로부터 구스넥브래킷의 상방 적절한 높이까지의 치수는 가능한한 기부와 동등한 것일 것

나) 가)의 부분으로부터 상방으로는 점차 포스트의 지름 및 두께를 감할 수 있으나 판두께(t)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음 산식에 따른 값 이상일 것. 또한, 아우트리거 또는 토핑브래킷을 붙이는 부분의 바깥지름은 기부의 바깥지름의 85퍼센트를 표준으로 한다.

$$t = 0.1d_m + 2.5(\text{밀리미터})$$

이 식에서

d_m 은 포스트의 해당 부분에 있어서의 최소 바깥지름 또는 변(센티미터)

5) 아우트리거

아우트리거는 적절한 구조로 하고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것

6) 포틀

가) 3) (다)에 따른 킹포스트의 균일한 단면의 포틀의 단면계수는 다음에 따른 것

- (1) 단면의 수직축에 관한 단면계수는 3)가) (1)에 따른 것에 다음 산식에 따른 계수를 곱한 것 이상일 것. 다만, 계수가 0.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0.2로 한다.

$$0.235 r/C + 0.1$$

이 식에서

r은 3)다) (1)에 따른 r과 같다.

C는 포스트 기부단면의 선박의 횡방향 축에 대한 실제의 단면계수와 3)가) (1)에 따른 단면계수와와의 비율

- (2) (1)에 불구하고 포스트의 선수측이나 선미측의 한쪽에만 데릭뿔을 설치하는 경우 단면의 수직축에 대한 단면계수는 (1)에 따른 것의 2분의 1로 할 수 있다.

- (3) 단면의 수평축에 대한 단면계수는 3)가) (1)에 따른 것에 다음 산식에

따른 계수를 곱한 것 이상일 것. 다만, 계수가 0.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0.2로 한다.

$$0.25 \, r'/C'$$

이 식에서

r' 는 3)다) (2)에 따른 r' 와 같다.

C' 는 포스트 기부단면의 선박의 길이 방향의 축에 대한 실제의 단면 계수와 3)가) (2)에 따른 단면계수와의 비율

나) 포틀은 굽힘에 대하여 단면의 변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히 보강되어 있는 것일 것

7) 포스트의 지지

포스트의 하부는 제한하중에 대하여 선체구조와 유효하게 이를 고착할 것

8) 국부 보강

포스트의 아우트리거 및 포틀 등에 토핑브래킷, 구스넥브래킷 및 기타 쇠붙이를 취부하는 부분은 이중판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보강할 것

9) 스테이

가) 스테이에 사용되는 와이어 로프는 한국산업규격 KSV3443 "선박용와이어로프의사용기준" 1) 또는 3)에 따른 와이어 로프일 것

나) 스테이에 사용되는 와이어로프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값이 그 와이어로프에 대한 한국산업규격 KSD3514 "와이어로프" 부표1 또는 부표3에 따른 파단하중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18 \frac{d_s^2}{\ell_o \ell_s} a \delta \cdot g \text{ (KN)}$$

이 식에서

d_s , a , ℓ_o 및 ℓ_s 는 각각 3)나)에 따른 d_s , a , ℓ_o 및 ℓ_s 와 같다. 다만, a 는 δ 의 값을 계산하는 경우와 동일방향으로 측정되는 것으로 한다.

δ 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값

$$\delta = C_s \frac{h}{h-h'} \cdot \frac{W \cdot O}{\frac{I}{h^2} + 7.32h \Sigma R}$$

이 식에서

I 는 포스트기부의 단면2차모멘트(네제곱센티미터)

h 는 2)에 따른 h 와 같다.

W , O 및 ΣR 는 각각 3)에 따른 W , O 및 ΣR 와 같다. 다만, ΣR 값의 계산에 있어서 a 는 데릭봄의 가동 범위의 모든 방향으로 측정되는 것

으로 한다.

Cs는 다음 표에 따른 값. 이 경우 w가 같은 표에 따른 값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보간법에 따른다.

W(톤)	2이하	3	4	5	6	7	8	9	10	15 이상
Cs	2.64	2.52	2.46	2.41	2.38	2.35	2.33	2.31	2.29	2.22

다) 스테이용 쇠붙이는 양질의 것으로서 적절한 치수를 가지는 것일 것

라) 리깅나사와 그 핀 및 체인플레이트아이는 스테이용 와이어로프에 대하여 적절한 것일 것

10) 데릭뿔

가) 데릭뿔의 지지부는 데릭뿔이 지지부부터 이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일 것

나) 데릭뿔 및 그 쇠붙이는 한국산업규격 KSV2211 "선박용강판제데릭뿔"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그 치수 등은 다음에 따른 것

(1) 데릭뿔의 중앙부의 적절한 길이 부분에 대한 단면2차모멘트(I)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값 이상일 것

$$I = C_B P \ell^2 (\text{네제곱센티미터})$$

이 식에서

C_B는 제한하중이 10톤 이하인 경우에는 2.75, 15톤 이상 50톤 이하인 경우에는 2.20. 이 경우 제한하중이 중간 값인 경우에는 보간법에 따른다.

ℓ은 데릭뿔의 유효길이(미터)

P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값

$$P = (a_1 \frac{\ell}{h-h'} + f) \cdot W \quad (\text{톤})$$

이 식에서

h는 2)에 따른 h와 같다.

W 및 h'는 각각 3)에 따른 W 및 h'와 같다.

a₁은 다음 표에 따른 값. 다만, W가 동표에 따른 값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보간법에 따른다.

W(톤)	2 이하	3	4	5	6	7	8	9	10	15 이상 50 이하
a ₁	1.28	1.23	1.20	1.18	1.16	1.15	1.14	1.13	1.13	1.10

f는 다음 표에 따른 값. 다만, 하역줄이 데릭몸의 상단부에 고정된 시브를 통하여 포스트의 정부로 유도되는 배치로 되어 있는 것은 0으로 한다.

하역줄용 활차의 시브수의 합계	1	2	3	4	5	6	7	8
f	1.102	0.570	0.392	0.304	0.251	0.216	0.192	0.172

(2) (1)에 불구하고 단면 2차모멘트(I)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값으로 할 수 있다.

$$I = (\pi/8) \cdot (d_o - t)^3 \cdot t \text{ (네제곱센티미터)}$$

이 식에서

d_o 는 중앙의 바깥지름(센티미터)

t는 판두께(센티미터)

(3) 데릭몸의 양단부 지름은 중앙부 지름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4) 데릭몸 본체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t)는 다음에 따른 값 또는 중앙부의 바깥지름의 50분의 1 중 큰 값 이상일 것

P가 7.7 미만인 경우 $t=6$ (밀리미터)

P가 7.7 이상인 경우 $t=0.13P + 5$ (밀리미터)

이 식에서

P는 1)에 따른 P와 같다.

(5) 데릭몸의 상단부쇠불이가 붙는 부분은 적절한 두께의 이중판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보강할 것

(6) 제한하중이 50톤을 초과하는 장치에 사용되는 데릭몸의 치수에 대하여는 다음에 따른 것

(가) 다음 조건식을 만족하는 것일 것

$$P_{or} / P \geq 4$$

이 식에서

P_{or} 는 붐좌굴하중(톤)

P는 1)에 따른 P와 같다

(나) 최대응력(σ)은 재료의 인장강도의 4분의 1 이하일 것

11) 쇠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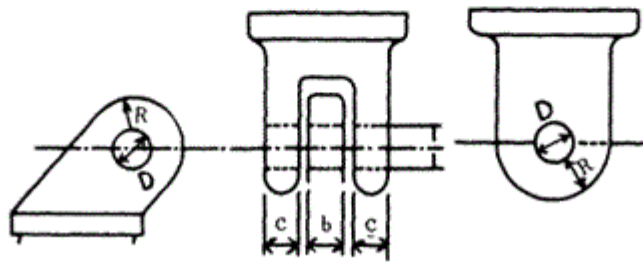
가) 데릭몸의 상단부쇠불이, 하단부아이, 토폰브래킷 및 구스넥브래킷은 각각 한국산업규격 KSV2211 "선박용강판제데릭몸", KSV2212 "선박용하역토폰브래킷" 및 KSV2213 "선박용하역구스넥브래킷"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그 치수는 다음에 따른 것. 다만, 제한하중이 50톤을 초과하는 장치용의 것에 대하여는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이 기준에 따른 치수는 한국산업규격 KSD3710 "탄소강단강품" 중 SF440A 또는 한국산업규격 KSD4101 "탄소주강품" 중 SC410의 규격에

적합한 재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것을 표시한다.

- (1) 데릭몸의 하단부아이 및 구스넥브래킷과 핀의 치수는 다음 조건식을 만족하는 것일 것

$$\begin{aligned} b &\geq e_1 \sqrt{P} \\ d &\geq e_1 \sqrt{P} \\ c &\geq 0.55 e_1 \sqrt{P} \\ 2 &\geq D-d \geq 1 \\ R &\approx D \end{aligned}$$

이 식에서 b, c, d, D, R는 다음 그림 1에 따른 치수(밀리미터)



(그림 1)

e_1 은 제한하중이 10톤 이하인 경우에는 15.6, 15톤 이상 50톤 미만인 경우에는 14.0. 이 경우 제한하중이 중간값인 경우에는 보간법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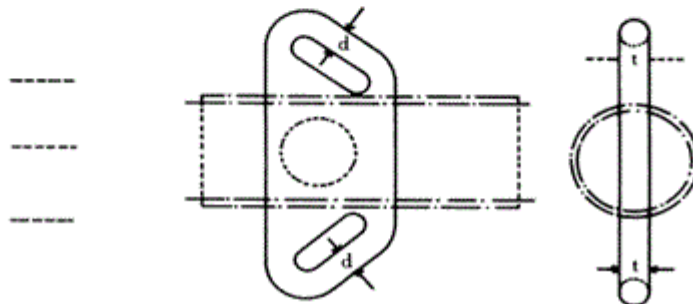
P는 10)나) 1)에 따른 P와 같다.

- (2) 데릭몸의 상단부쇠붙이의 치수는 그 형상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식을 만족하는 것일 것

(가)
$$\begin{aligned} d &\geq e_2 \sqrt{T} \\ t &\geq e_2 \sqrt{T} \end{aligned}$$

이 식에서

d, t 는 그림 2에 따른 치수



(그림 2)

e_2 는 제한하중이 10톤 이하인 경우에는 12.5, 15톤 이상 50톤 이하인 경우에는 11.2. 다만, 제한하중이 중간 값인 경우에는 보간법에 따른다.

T는 다음에 따른 값

$T = a_1 \cdot a_2 \cdot W$ (토팅리프트용 활차쇠붙이의 경우)

$T = \lambda \cdot W$ (하역줄용 활차쇠붙이의 경우)

이 식에서

a_1 는 10)나) (1)에 따른 a_1 과 같다.

W는 제한하중(톤)

a_2 는 다음 표에 따른 값. 다만, 동표에 따른 값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보간법에 따른다.

$\ell / (h-h')$		2.0	1.9	1.8	1.7	1.6	1.5	1.4	1.3	1.2
a_2	W가 10톤 이하인 경우	1.99	1.90	1.81	1.73	1.65	1.57	1.49	1.42	1.35
	W가 15톤 이상 50톤 이하인 경우	1.82	1.73	1.65	1.57	1.49	1.41	1.33	1.26	1.19

비고

1. ℓ 은 데릭몸의 유효길이(미터)
2. h' 는 3)가) (3)에 따른 h' 와 같다.
3. h 는 2)에 따른 h 와 같다.

λ 는 다음 표에 따른 값. 다만, 하역줄이 데릭몸의 상단부에 고정된 시브를 통하여 포스트의 정부로 유도되는 배치로 되어 있는 것은 1.0으로 한다.

하역줄용 활차의 시브수의 합계	1	2	3	4	5	6	7	8
λ	2.10	1.58	1.40	1.31	1.26	1.23	1.20	1.18

(나) $R \geq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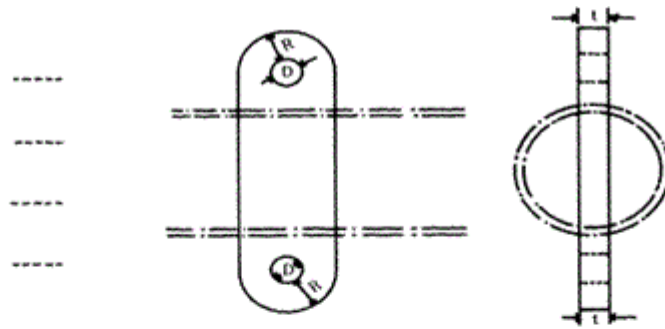
$$t \geq e_1 \sqrt{T}$$

다만, R가 특히 큰 경우에는 다음 조건식을 만족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t \cdot (R - D/2) \geq e_2 \cdot T$$

이 식에서

R, D, t는 그림 3에 따른 치수(밀리미터)



(그림 3)

e_2 는 제한하중이 10톤 이하인 경우에는 122, 15톤 이상 50톤 이하인 경우에는 98. 이 경우 제한하중이 중간 값인 경우에는 보간법에 따른다.

e_1 은 (1)에 따른 e_1 과 같다.

T는 (가)에 따른 T와 같다.

(3) (1) 또는 (2)에 따르지 아니하는 부분의 치수는 해당 부분에 가하여지는 힘에 대하여 적당한 것일 것

나) 데릭뿔, 마스트 및 선체구조에 영구적으로 장치되는 부착물은 양질의 것이어야 하며, 적당한 치수의 것일 것

2. 제한하중 등의 확인을 위한 기준

가. 하역장치는 다음 표에 따른 하중시험을 행하여 이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제한하중	시험하중
20톤 미만	제한하중의 1.25배의 하중
20톤 이상 50톤 미만	제한하중에 5톤을 가한 하중
50톤 이상 100톤 미만	제한하중의 1.1배의 하중
100톤 이상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중

나. 가목에 따른 하중시험은 시험하중에 상당하는 중량물을 달아올린 후 사용하는 최대의 아웃리치까지의 사이 및 주행예정거리에서 선회 또는 이동시키는 방법에 따라 한다. 다만, 수리 또는 변경이 가하여진 하역장치에 대하여는 스프링저울 또는 하이드로릭밸런스를 사용하여 선회 또는 이동의 양단에서 5분간 연속하여 시험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을 부하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

다. 데릭장치에 대한 나목의 하중시험은 데릭뿔의 수평면에 대한 각도를 제한하중이 10톤 이하는 15도, 제한하중이 10톤 이상인 것은 25도로 하여 행한다. 다만, 제한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을 부하하여 사용하는 범위에 있어서의 최소의 각도가 이들 각도를 넘는 경우에는 그 최소의 각도로 할 수 있

다.

라. 지브크레인에 대한 나뭇의 하중시험은 그 선회반경을 사용되는 범위 중 최소치와 최대치로 하여 행한다.

마. 하중시험시에는 원치의 제동장치에 대한 효력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만, 원치 단독의 하중시험을 시행하여 제동장치의 효력시험이 확인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하역장치의 안전성 확보 등

가. 데릭뿔과 데릭포스트의 접합부는 데릭뿔이 지지부부터 이탈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주행크레인은 차축 또는 차가 파손된 경우에 전복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다. 동력장치의 기어 그 밖의 전도장치, 축계, 대전부 및 증기관에는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덮개, 둘러싸개 등의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4. 하역원치의 설비요건 등

가. 원치(토폰리프트원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제한하중에 상당하는 중량물을 올리고 내리는 동안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제동장치(전동원치에 있어서는 전자브레이크를 말한다)를 설비한 것으로서 로프가드가 부착되어야 하며(데릭장치에 사용되는 원치로 한정한다) 원치드럼의 양단에 있어서의 귀의 높이는 권상용 와이어로프를 빠짐없이 또한 여유를 남기지 아니하고 감는 경우 그 로프지름의 2배 이상의 여유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증기 원치의 배기관의 개구단은 배기가 취급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배치된 것이어야 한다.

다. 유압 원치에는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전동 원치는 다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제어기에 근접한 위치에 전로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모터의 주회로 전원으로로부터 분리하는 스위치를 근접한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2) 과부하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비하거나 이에 준하는 안전장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다만, 교류전동원치 중 극수변환방식의 것에는 과부하계전기를 설비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하역장구의 제한하중

하역장구(하역장치에 사용되는 체인, 링, 혹, 섹클, 스위블, 리깅스크류, 활차 및 로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한하중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파괴강도에 대하여는 안전계수가 다음 표에 따른 값 이상일 것. 다만, 와이어로프의 파괴강도는 절단시험을 하여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구 분	안전계수
-----	------

체 인		4.5
와이어로프		5
와이어로프 외의 로프		7
그 밖의 하역장구	제한하중이 10톤 이하인 것	5
	제한하중이 10톤 초과인 것	4

나. 로프 외의 하역장구는 다음 표의 시험하중에 따른 하중시험을 하여 이상이 없는 것일 것

구 분		시 험 하 중
단활차		제한하중의 4배의 하중
단활차 외의 활차	제한하중 20톤 이하	제한하중의 2배의 하중
	제한하중 20톤 초과 40톤 이하	제한하중에 20톤을 가한 하중
	제한하중 40톤 초과	제한하중의 1.5배의 하중
그 밖의 하역장구		제한하중의 2배의 하중

6. 크레인 권위의 설비요건

크레인의 권위의에 대한 설비요건에 대하여는 제4호에 따른 하역원치의 기준을 준용한다.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2] <개정 2021. 6. 30.>

예인설비의 비치 및 검사에 관한 사항(제81조제2항 관련)

1. 예인선이 갖추어야 하는 예인설비

가. 예인선의 예인설비는 예인장치 및 예인장구로 구분하며 다음에 따라 설치 또는 비치할 것

예인설비의 명칭		비고
예 인 장 구	예인용 줄[강철줄(와이어로프) 또는 로프]	예인하려는 부선에 비치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예인용 줄 연결용체인	
	삼각판	예인방식에 따라 필요시 비치
	연결용새클	
예 인 장 치	예인용 고리(Hook)	훅으로 선체에 고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블라드, 비트 또는 페어리더	
	예인용 캡스틴(예인용 줄을 감거나 푸는 기계)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예인용 줄의 길이(S)는 다음의 산식에 따른 값 이상일 것

$$S = K(L1 + L2) \text{ (미터)}$$

이 식에서

L1은 예인선의 길이(미터) 또는 부선의 길이(예인선이 통상 예인하는 부선의 최대길이를 추정한 길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분의1(미터)

L2는 부선의 길이(미터)

K는 다음 표에 의한 값

	연해구역 이하	근해구역 이상
K	2.0	3.0

다. 예항설비에 대한 절단하중, 극한강도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계산에 따른 값 이상일 것

1) 예인용 줄의 절단하중(X)은 다음 표와 같다. 이 경우 블라드풀(BP)은 라목1)에서 계산한 전저항(Rt)을 기준으로 한다.

	BP < 40	40 ≤ BP ≤ 90	BP > 90
X (톤)	3 × BP	(3.8 - BP/50) × BP	2 × BP

2) 예인용 줄 연결용체인, 연결용새클, 삼각판 및 링 등의 절단하중(Tc)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Tc = 1.5 \times X \text{ (톤)}$$

이 식에서

X는 1)에 따른 예인용 줄의 절단하중(톤)

3) 예인용 고리의 절단하중(T_h)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T_h = 1.5 \times X (\text{톤})$$

이 식에서

X 는 1)에 따른 예인용 줄의 절단하중(톤)

4) 볼라드, 비트, 페어리더 및 브래킷 등의 극한강도(T_b)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T_b = 1.3 \times X (\text{톤})$$

이 식에서

X 는 1)에 따른 예인용 줄의 절단하중(톤)

라. 예인용 줄에 걸리는 저항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저항을 모두 합한 값 이상일 것

1) 부선의 전저항(R_t)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R_t = R_f + R_w + R_a (\text{톤})$$

이 식에서

R_f 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마찰저항

$$R_f = 0.000136 F_1 \cdot A_1 \cdot V^2 (\text{톤})$$

이 식에서

F_1 은 선체표면의 상태를 나타내는 계수로서 0.8

A_1 은 수면하부의 침수표면적(제곱미터)

V 는 예인속력(노트)

R_w 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조파저항

$$R_w = 0.014 C \cdot F_2 \cdot A_2 \cdot V^2 (\text{톤})$$

이 식에서

C 는 거친 해상상태의 저항계수로서 1.2

F_2 는 선수형상에 따른 계수

선수형상	F_2
	0.4
	0.5
	0.6
	0.5

	1.0
---	-----

A2는 수면하부의 선체횡단면적(제곱미터)

V는 예인속력(노트)

Ra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된 공기저항

$$Ra = 0.0000195Cs \cdot CH \cdot A3(Vw + V)^2 \text{ (톤)}$$

이 식에서

Cs는 바람에 면한 선체표면형상에 따른 계수

선 체 표 면 형 상	Cs
구형(Spherical)	0.4
원통형(Cylindrical)	0.5
레그 브레이스(Leg brace)	0.5
레그 코드(Leg cord)	0.7
크고 평평한 선체/갑판실(Large flathull/deckhouse)	1.0
밀집된 갑판실(Clustered deckhouse)	1.1
데릭-격자형구조(latticed structure)	1.25
독립된 형상(crane, beam 등)	1.5

CH는 바람에 면한 면적 중심의 수면으로부터의 높이에 따른 계수

수면으로부터의 높이(미터)	CH
0.0 - 15.3	1.0
15.3 - 30.5	1.1
30.5 - 46.0	1.2
46.0 - 61.0	1.3
61.0 - 76.0	1.37
76.0 - 91.5	1.43
91.5 - 106.5	1.48
106.5 - 122.0	1.52
122.0 - 137.0	1.56
137.0 - 152.5	1.60
152.5 - 167.5	1.63
167.5 - 183.0	1.67
183.0 - 198.0	1.70
198.0 - 213.5	1.72
213.5 - 228.5	1.75
228.5 - 244.0	1.77

244.0 - 256.0	1.79
256 이상	1.80

A3는 바람에 노출된 수선 상부의 전체 횡단면적(제곱미터)

Vw는 풍속으로서 항해구역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값(노트)

항해구역	풍속(노트)
평수구역	29.16
연해구역	36.93
근해구역	50.54

V는 예인속력(노트)

2) 유효파고에 따른 부가저항은 다음과 같다.

유효 파고(미터)	부가저항(톤)
1.5	1.0
3.0	5.5
4.5	10.0
6.0	14.0
7.5	16.0

2. 예인선항해검사의 검사사항

가. 예인선

- 1) 총톤수 2,000톤 이상인 부선을 예인하는 예인선의 경우에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예항력증명서(이하 "예항력증명서"라 한다)상의 예항력(예항력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 값)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부선 등의 저항 값 이상인지 확인할 것

예항력(P)=1.1x엔진마력(BHP)/100(톤)

- 2) 해당 예인선의 검사이력 등을 검토하여 선박안전법령에 따라 정기적인 검사를 받고 감항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것
- 3) 수선 상부의 선체 외판, 갑판, 수밀격벽 등의 주요 부재와 수선 하부에 대하여는 전회 정기검사 등 검사기록을 조사하고 이상이 없는가를 확인할 것
- 4) 폭로부의 모든 개구를 검사하고 각종 폐쇄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것

나. 예인설비

- 1) 예인용 줄, 예인용 줄 연결용체인, 연결용새클 등의 재질·치수 및 현상을 확인할 것
- 2) 예인용 캡스틴, 삼각판, 혹, 볼라드(비트나 페어리더를 포함한다)등의 현상을 확인할 것
- 3) 예인설비의 배치가 적합하게 배치되어 있는 가를 확인할 것
- 4) 예인용 줄 또는 연결용 체인 등이 항해 중에 선체부재와 접촉되어 마찰로

인한 손상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곳에는 적절히 보강을 하거나 가이드롤러 등의 방법으로 마찰이 최소가 되도록 할 것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3]

공단 및 선급법인의 대행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
(제85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처분내용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정을 체결한 경우	영 제11조제1항	대행취소
2.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영 제11조제1항	업무정지 6개월
3.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협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영 제11조제1항	업무정지 3개월
4. 법 제75조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등 명령을 거부한 경우	영 제11조제1항	업무정지 2개월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4] 삭제 <2018. 5. 1.>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5] <개정 2013.3.24>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대행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제88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처분내용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지정을 받은 경우	영 호 제13조제1항제1	대행취소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등을 한 경우	영 호 제13조제1항제2	대행취소
3. 대행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영 호 제13조제1항제3	대행취소
4.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영 호 제13조제1항제4	업무정지 6개월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검정 등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 호 제13조제1항제5	업무정지 3개월
6.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영 호 제13조제1항제6	업무정지 2개월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개정 2013.3.24>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대행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제89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처분내용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지정을 받은 경우	영 호 제14조제1항제1	대행취소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 또는 승인을 한 경우	영 호 제14조제1항제2	대행취소
3. 대행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영 호 제14조제1항제3	대행취소
4.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영 호 제14조제1항제4	업무정지 6개월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검사 및 승인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 호 제14조제1항제5	업무정지 3개월
6.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영 호 제14조제1항제6	업무정지 2개월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7]

함만국 통제에 따른 결함의 시정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수수료
(제99조 관련)

근무시간의 구분 \ 수수료의 종류	기본수수료
근무시간 내	30만원
근무시간 외	45만원
비고 : 1. 기본수수료는 사무실 출발부터 사무실 도착시간까지를 기준으로 4시간을 적용한다. 2. 4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 시간당 5만원을 할증한다.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8. 20.>

(앞 쪽)

건 조(별 도 건 조) 검 사 신 청 서

※ □는 해당란에 √표시하며, 뒤 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 조 자	①성명(대표자명)			
	②주 소			
	③상 호	(전화 :)		
소 유 자	④성명(대표자명)			
	⑤주 소			
	⑥상 호	(전화 :)		
⑦건 조 번 호			⑧선 적 항	
⑨선 종		☐ 기선 ☐ 범선 ☐ 부선 ☐ 기타	⑩선 질	☐ 강 ☐ 목 ☐ FRP ☐ 기타
⑪용 도			⑫총 톤 수	톤
⑬선 박 길 이		미터	⑭추 진 기 관	[kW] [PS] 대 [kW] [PS] 대
⑮항 해 구 역		구역	⑯착공(예정)일	년 월 일
⑰준공(예정)일		년 월 일	⑱수검요청일자	년 월 일
⑲수 검 장 소				
⑳비 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박의
건조(별도건조)검사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건조(별도건조)검사 신청안내

(뒤 쪽)

제출하는 곳	대행검사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급법인)	처리부서	지역별 사무소
수 수 료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처리기간	건조기간 + 25일 (별도건조검사의 경우 25일)
유 의 사 항	☐ 벌칙 규정 ○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조검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건조검사 대상 선박 ○ 모든 선박 ☐ 별도건조검사 대상 선박 ○ 외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선박 ○ 2007년 11월 4일 이전에 선박안전법령에 따라 제조검사를 받지 아니한 모든 선박 ☐ 건조검사를 받아야 하는 설비 ○ 선체, 기관, 배수설비, 조타설비, 계선·양묘설비 및 전기설비 ○ 만재흡수선(해당 선박만 검사받습니다) ☐ 기 타 ○ 건조검사는 해당 선박이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받아야 합니다. ○ 건조검사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기본설계도면 외의 설계도면과 검정증서·확인서 또는 합격증서·예비검사증서는 해당 선박시설의 공사착공부터 착공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8. 20.>

(앞 쪽)

제 호 Certificate No. :			
건 조(별 도 건 조) 검 사 증 서 SHIP-BUILDING (SPECIAL SHIP-BUILDING) SURVEY CERTIFICATE			
건 조 자 Builder	성 명 (대표자명) Name		
	상 호 Company		
선 명 Name of Ship		건 조 번 호 Building No.	
선 적 항 Port of Registry		선 질 Ship Material	
용 도 Type of Ship		계획총톤수 Design Gross Tonnage	톤
주 요 치 수 Principal Dimensions		길이: 미터, 너비: 미터, 깊이: 미터 Length: m, Breadth: m, Depth: m	
추 진 기 관 Main Engine		기 관 기 관 [킬로와트(kW)] [킬로와트(kW)] Output	대 대 Nos. [마력(PS)] [마력(PS)]
비 고 Remarks			

「선박안전법」 제7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7.2 and 7.4 of the Ship Safety Act and Article 10.4 and 11.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 Safety Act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Y M D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선 급 법 인 의 장)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

직인

(뒤 쪽)

검 사 기 록 Survey Records		
검사완료일 Date of Survey	검사장소 Place of Survey	선박검사관 (검사원)의 성명 Name of Surveyor

비 고
Remarks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8. 20.>

선박검사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수검요청일부터 25일 이내
검사종류	☐ 최초의 정기검사 ☐ 정기검사 ☐ 제1종 중간검사 ☐ 제2종 중간검사 ☐ 임시검사 ☐ 임시항해검사 ☐ 특별검사 ☐ 강화검사 ☐ 예인선항해검사		
소유자	성명(대표자명)		상호(법인명)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팩스번호)
	주소		
선박	선박의 명칭		선박번호
	수검요청일		수검장소
비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80조제1항, 제81조제4항 및 제9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박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선급법인의 장

작성 방법

1. 임시검사 신청 시에는 그 이유 및 변경사항을 위 '비고'란에 적으십시오.
2. 최초의 정기검사 신청 시에는 아래의 '선박 내역'란(선령 부분은 제외합니다)을 추가로 적으십시오.
3. 강화검사 신청 시에는 아래의 '선박 내역'란(선령 부분을 포함합니다)을 추가로 적으십시오.
4. 예인선항해검사 신청 시에는 아래의 '예인선항해검사'란을 추가로 적으십시오.

선박 내역	선 적 항	선 종			[]기선 []범선 []부선 []그 밖의 선종	
	선 질	[]강(鋼) []목(木) []강화플라스틱 (FRP) []그 밖의 선질			용 도	
	총 톤 수	톤			선박길이	
	추진기관	[kW] [kW]	[PS] [PS]	[대] [대]	무선설비	
	항해구역	구역			선 령	
	최대승선인원	명(여객 : 명, 선원 : 명, 임시승선자 : 명)				
	하역장치	제한하중 : 제한각도 : 제한반경 :				
예인선 항해검사	통상 예인하는 부선의 제원		최대길이 :	미터, 너비 :	미터, 깊이 :	미터
	예인속력		노트(knot)			

(위쪽)

첨부서류	1. 건조검사증서 또는 별도건조검사증서(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한정하며, 건조검사 또는 별도건조검사를 정기검사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선박검사증서(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검사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최초의 정기검사 및 임시항해검사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3. 해당 선박검사 관련 승인도면(최초의 정기검사 및 임시검사로 한정하며, 도면승인을 한 대항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4. 검정증서·확인서·예비검사증서 또는 하역설비검사기록부(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검사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 선박의 운항계획서(임시항해검사로 한정합니다) 6. 특별검사와 관련되는 서류 또는 도면(특별검사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검사를 대행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	---	--

유의사항

□ 선박검사의 종류

- 정기검사 : 최초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받는 정밀한 검사
- 중간검사 : 정기검사와 다음의 정기검사 사이에 받는 간이한 검사
- 임시검사 : 선박시설에 대하여 개조 또는 수리를 하려는 경우, 선박의 무선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선박 검사증서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밖에 「선박안전법」 제10조에 따라 받는 검사
- 임시항해검사 : 정기검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외국선박의 시운전을 하려는 경우에 받는 검사
- 특별검사 :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의 구조·설비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유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 관련 선박의 구조·설비 등에 대하여 하는 검사
- 강화검사 : 유조선·산적화물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액화가스산적운송선은 제외합니다)의 선박검사에 추가하여 선체구조를 구성하는 재료의 두께확인 등에 대한 정밀한 검사
- 예인선항해검사 : 예인선이 부선 및 구조물 등을 예인하기 위하여 갖추어 둔 예인설비 등에 대한 검사

□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 적용 제외 선박

- 군함 및 경찰용 선박
- 노, 상앗대, 폐달 등을 이용하여 인력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선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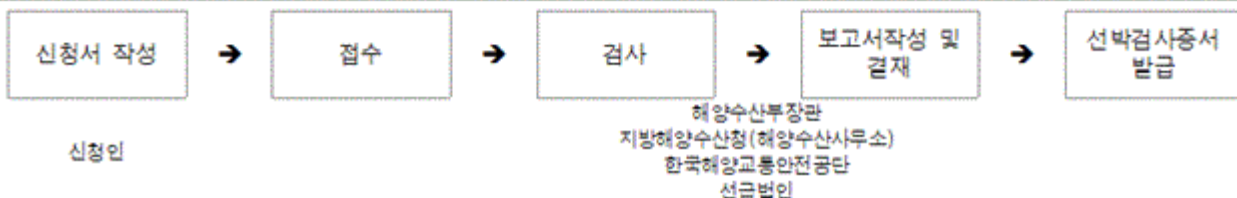
□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조검사·선박검사 또는 국제협약검사를 받은 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의 길이·너비·깊이·용도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개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항해구역을 넘어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 선박검사증서 등이 없거나 선박검사증서 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부선 및 구조물 등을 예인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선박검사증서 등을 선박(소형선박은 제외합니다)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또는 예인선항해검사증서를 예인선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그 밖의 사항

- 정기검사는 해당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중간검사는 검사기준일 또는 지정된 검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종 및 제2종 중간검사를 받는 선박에 있어서 선저검사는 전회의 선저검사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해당 선박이 정기검사 또는 국제협약검사를 받기 곤란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선박이 외국에서 정기검사 또는 국제협약검사를 받았으나 선박검사증서 또는 국제협약검사증서를 선박에 갖추어 둘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5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선박이 짧은 거리의 항해에 사용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선박검사증서 또는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8. 20.>

(앞쪽)

제 호 Certificate No:			
선 박 검 사 증 서 SHIP SURVEY CERTIFICATE			
①선 명 Name of Ship		②선박번호 Official Number	
③선 질 Ship's Material		④총톤수 Gross Tonnage	톤 tons
⑤용 도 Type of ship			
⑥추진기관 Main Engine	기관 기관 Type	[kW] [kW] Output	[PS] [PS] 대 Number of Units
⑦선박길이 Ship's Length	미터 m	⑧무선설비 Radio Equipment	
⑨항해구역 Navigation Area			
⑩최대승선인원 Max. Number of Allowable Persons on board	명(여객: 명, 선원: 명, 임시승선자: 명) Total p(Passenger: p, Crew: p, Special Personnel: p)		
⑪항해와 관련한 조건 Conditions for Navigation			
⑫유효기간 Validity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This certificate is valid from . . . until . . .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8.2 of the Ship Safety Act and Article 13.1.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 Safety Act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Y M D 해양수산부장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선 급 법 인 의 장)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220g/m²]

(뒤 쪽)

검 사 기 록 Survey Records						
다 음 검 사 Next Survey			검사완료일 Date of Survey	검사장소 Place of Survey	선박검사관 (검사원)의 성명 Name of Surveyor	검사기관 (인) Survey Organization
검사기준일 Anniversary Date	검사종류 Kind of Survey	검 사 사 항 Survey Items				
비 고 Remarks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8. 20.>

(앞 쪽)

제 호 Certificate No.:			
선 박 검 사 증 서 SHIP SURVEY CERTIFICATE			
①선 명 Name of Ship		②선 박 번 호 Official Number	
③선 질 Ship's Material		④총 톤 수 Gross Tonnage	톤 tons
⑤용 도 Type of Ship			
⑥추 진 기 관 Main Engine	기관 기관 Type	[kW] [kW] Output	[PS] [PS] Number of Units.
⑦선 박 길 이 Ship's Length	미터 m	⑧무 선 설 비 Radio Equipment	
⑨항 해 구 역 Navigation Area			
⑩최대승선인원 Max. Number of Allowable Persons on board	명(여객: 명, 선원: 명, 임시승선자: 명) Total p(Passenger: p, Crew: p, Special Personnel: p)		
⑪항해와 관련한 조건 Conditions for Navigation			
⑫유효 기 간 Validity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This certificate is valid from until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8.2 of the Ship Safety Act and Article 13.1.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 Safety Act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Y M D 해양수산부장관 인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선급법인의장)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			

210mm × 297mm [보존용지(1종) 220g/m²]

(뒤 쪽)

⑩만재 수선 의 위치 Load Line	갑판선의 상면의 위치: 선박 길이의 중앙에 있어서 갑판의 선측 상면의 연장 과 외판의 외면과의 교점으로부터 방향으로 밀리미터 The upper edge of the deck line from which these freeboards are measured is mm from the top of the deck at side		⑨구획만 재수선 의 위치 Subdivi on Load Line	화물 탑재장 소 to apply when the spaces in which passengers are carried include the following alternative space	좌란의 여객탑재상태 에 대응하는 구획만 재수선의 위치 Freeboard	좌란의 구획 만재수선 의 기호 Marks of Sub - division Load Lines assigned and marked on the ship's side amidships				
	만재수선을 표시하는 수평선[하기만 재수선(S)·해수만재수선 또는 만 재수선]의 상면의 위치: 갑판선의 상면으로부터 하방으로 밀리미터 Summer Load Line(S): mm below from the upper edge of deck line			갑판선 상면의 하방 으로 밀리미터 mm below upper edge of deck line		P ₁				
	동기만재수선(W)의 위치: S의 하방으로 밀리미터 Winter Load Line(W): mm below Summer Load Line			갑판선 상면의 하방 으로 밀리미터 mm below upper edge of deck line		P ₂				
	동기북대서양만재수선(WNA)의 위치: S의 하방으로 밀리미터 Winter North Atlantic Load Line(WNA): mm below Summer Load Line			갑판선 상면의 하방 으로 밀리미터 mm below upper edge of deck line		P ₃				
	열대만재수선(T)의 위치: S의 상방으로 밀리미터 Tropical Load Line(T): mm above Summer Load Line		⑪목재만 재수선 의 위치 Timber Load Line	하기목재만재수선(LS)의 위치: S의 상방으로 밀리미터 Timber Summer Load Line(LS): mm above Summer Load Line						
	위의 각 만재수선에 대응하는 담수만 재수선의 위치: 각 만재수선 상방으로 밀리미터 Allowance for fresh water for all freeboards other than timber: mm			동기목재만재수선(LW)의 위치: LS의 하방으로 밀리미터 Timber Winter Load Line(LW): mm below LS						
				동기북대서양목재만재수선(LWNA)의 위치: LS의 하방으로 밀리미터 Timber Winter North Atlantic Load Line(LWNA): mm below LS						
				열대목재만재수선(LT)의 위치: LS의 상방으로 밀리미터 Timber Tropical Load Line(LT): mm above LS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 Endorsement to extend the Validity of the Certificate										
연장된 유효기간 Extended Date of Validity		년 월 일까지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 . .		검사기관(인) Survey Organization						
검 사 기 록 Survey Records										
다음 검 사 Next Survey			검사 완료일 Date of Survey	검사 장소 Place of Survey	선박검사관 (검사원)의 성명 Name of Surveyor	검사기관(인) Survey Organization				
검사기준일 Anniversary Date	검사종류 Kind of Survey	검 사 사 항 Survey Items								
비 고 Remarks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 8. 20.>

(앞 쪽)

중 간 검 사 시 기 연 기 신 청 서

※ 뒤 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박소유자	① 성 명 (상 호)			
	② 주 소			
③ 선 명			④ 선 박 번 호	
⑤ 선 적 항			⑥ 선 질	
⑦ 총 톤 수			⑧ 용 도	
⑨ 중간검사시기를 연기받으려는 중간검사의 종류				
⑩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⑪ 비 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중간검사시기를 연기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중간검사시기 연기 신청안내 (뒤 쪽)

제출하는 곳	대행검사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급법인)	처리부서	지역별 사무소
수 수 료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처리기간	3일

유의사항

- ☐ 과태료 규정
-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 기 타
- 중간검사시기의 연기로 인하여 연기된 중간검사와 정기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제1종 중간검사와 제2종 중간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제1종 중간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9. 8. 20.>

제 호 Certificate No. :			
임 시 변 경 증 TEMPORARY ALTERATION CERTIFICATE			
① 선 명 Name of Ship		② 선 박 번 호 Official Number	
③ 선 적 항 Port of Registry		④ 선 질 Ship's Material	
⑤ 총 톤 수 Gross Tonnage	톤 tons	⑥ 선 박 길 이 Ship's Length	미터 m
⑦ 선박검사증서의 번호 No. of Ship's Survey Certificate			
⑧임 시 변경사항 Temporary Alterations	항해구역 Navigation Area		
	최대승선인원 Max Number of Allowable Persons on board	명(여객 : 명, 선원: 명, 임시승선자 : 명) Total p(Passenger p, Crew p, Special Personnel p)	
	기 타 Others	-	
⑨유효 기 간 Validity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This certificate is valid from . . . until . . .	
「선박안전법」 제1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9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3 of the Ship Safety Act and Article 21.9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 Safety Act under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 8. 20.>

(앞 쪽)

제 호 Certificate No.:			
임 시 항 해 검 사 증 서 TEMPORARY NAVIGATION CERTIFICATE			
선 명 Name of Ship		선 박 번 호 Official Number	
선 적 항 Port of Registry		선 질 Ship's Material	
총 톤 수 Gross Tonnage	톤 Tons	용 도 Ship's Type	
선 박 길 이 Ship's Length	미터 m		
항 해 구 역 Navigation Area			
최대승선인원 Max. Number of Allowable Persons on board	명(여객 : 명, 선원 : 명, 임시승선자 : 명) Total p(Passenger p, Crew p, Special Personnel p)		
항 로 Navigation Route			
유 효 기 간 Validity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This certificate is valid from . . . until . . .		
항해와 관련한 조건 Conditions for Navigation			
「선박안전법」 제1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2 of the Ship Safety Act and Article 22.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 Safety Act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Y H D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선 급 법 인 의 장)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 직인			

(뒤 쪽)

검 사 기 록 Survey Records		
검사완료일 Date of Survey	검사장소 Place of Survey	선박검사관 (검사원)의 성명 Name of Surveyor

비 고
Remarks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6. 8. 25.>

(1면)

증서번호 제 _____ 호
Cert. No. _____

여객선 안전증서

PASSENGER SHIP SAFETY CERTIFICATE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이 증서에는 여객선안전설비기록부(양식 P)를 추가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This certificate shall be supplemented by a Record of Equipment for Passenger Ship Safety(Form P).

국제* 항해에 대한 것
~~단국제*~~

for $\frac{an^*}{a \text{ short}^*}$ international voyage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및 같은 협약에 관한 1988년 의정서에 따라 대한
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as modified by the
Protocol of 1988 relating thereto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by _____.

선명 Name of Ship	선박번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선적항 Port of Registry	총톤수 Gross Tonnage	선박의 운항구역 (제IV장 제2규칙)** Sea areas in which ship is certified to operate(regulation IV/2)**	IMO 번호*** IMO Number***

건조일 :

Date of build:

- 건조 계약일
Date of building contract
- 용골(선박 바닥 중앙의 길이 방향 지지대)이 거치되거나 또는 그와 동등한 건조 단계에 달한 날
Date on which keel was laid or ship was at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 인도일
Date of delivery
- 해당되는 경우, 주요 특성의 개조나 변경 또는 수정작업의 시작일
Date on which work for a conversion or an alteration or modification of a major character was commenced (where applicable)

적용 가능한 모든 일자를 기재할 것.

All applicable dates shall be completed.

이 증서는 다음 사항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1. 이 선박은 협약의 제 I 장 제7규칙의 요건에 따라서 검사되었음
That the ship has been survey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regulation I/7 of the Convention.
2. 이 선박의 검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That the survey showed that:
 - 2.1 아래의 사항에 관하여 협약의 요건에 적합함:
The ship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s regards:

*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 A3 해역에서 운항할 수 있도록 인증된 선박의 경우, 인정된 이동식 위성서비스를 괄호 안에 표시할 것

** For a ship certified to operate in sea area A3, indicate the recognized mobile satellite service in brackets.

*** IMO에서 Res. A.600(15)로 채택된 IMO 선박식별번호계획에 따른 것

In accordance with IMO ship identification number scheme adopted by the Organization by resolution A.600(15).

(2면)

- .1 구조, 주기관, 보조기관, 보일러 및 그 밖의 압력용기:
the structure, main and auxiliary machinery, boilers and other pressure vessels:
- .2 수밀구획의 배치 및 상세:
the watertight subdivision arrangements and details:
- .3 다음의 구획만재흘수선:
the following subdivision load lines:

선측의 중앙부에 지정되고 표시된 구획만재흘수선(제II-1장 제18규칙 ***) Subdivision load lines assigned and marked on the ship's side amidships (regulation II-1/18 ***)	건 현 Freeboard	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있는 다음의 장소가 여객을 적재하는 장소에 포함되는 경우에 적용할 것. To apply when the spaces in which passengers are carried include the following alternative spaces
P. 1	_____	_____
P. 2	_____	_____
P. 3	_____	_____

- 2.2 _____을(를) 연료로 사용함으로써 협약의 제 II-1장 G편 요건을 갖추* /해당사항 없음*
the ship complied with part G of chapter II-1 of the Convention using _____ as fuel* /N.A.*

- 2.3 방화구조, 화재안전장치 및 설비와 화재제어도는 협약의 요건에 적합함:
the ship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s regards structural fire protection, fire safety systems and appliances and fire control plans:
- 2.4 구명설비와 구명정, 구명뗏목 및 구조정의 의장품을 이 협약의 요건에 따라 비치하고 있음:
the life-saving appliances and the equipment of lifeboats, liferafts and rescue boats were provid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 2.5 구명줄 발사기를 협약의 요건에 따라 비치하고 있음:
the ship was provided with a line-throwing appliance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 2.6 무선설비가 협약의 요건에 적합함:
the ship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s regards radio installations:
- 2.7 구명설비용 무선설비의 공급과 기능이 협약의 요건에 적합함
the provision and the functioning of the radio installations used in life-saving appliances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 2.8 선박용 항해설비, 도선사용 승하선 장치 및 항해용 간행물이 협약의 요건에 적합함:
the ship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s regards shipborne navigational equipment, means of embarkation for pilots and nautical publications :
- 2.9 이 협약 및 현행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의 요건에 따라 음향신호와 조난신호의 수단, 등화 및 형상물을 비치하고 있음:
the ship was provided with lights, shapes, means of making sound signals and distress signals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nd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in force:
- 2.10 그 밖의 모든 점에서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함
in all other respects the ship complied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 2009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구획부호 "C.1, C.2 및 C.3"이 사용되어야 함.

For ships constructed before 1 January 2009, the applicable subdivision notation "C.1, C.2 and C.3" should be used.

(3면)

2.11 이 선박은 협약 제II-1장 제55규칙*/제II-2장 제17규칙*/III장 제38규칙*에 따른 대체설계 및 배치가 적용되었음*/적용되지 않았음*:

the ship was*/was not* subjected to an alternative design and arrangements in pursuance of regulation(s) II-1/55*/II-2/17*/III/38* of the Convention;

2.12 기관 및 전기설비*/방화설비*/구명설비*에 대한 대체설계 및 배치의 승인서류가 이 증서에 첨부되었음*/첨부되지 않았음*.

a Document of approval of alternative design and arrangements for machinery and electrical installations*/fire protection*/life-saving appliances and arrangements* is*/is not* appended to this Certificate.

3. 면제증서가 발행되었음*/발행되지 않았음*.

That an Exemption Certificate has*/has not* been issued.

이 증서는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 유효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_____day of _____.

이 증서 발급을 위한 검사완료일:

Completion date of the survey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_____ on the _____day of _____.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글 및 영문)
선 급 법 인 명(한글 및 영문)

직인

*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4면)

정기검사가 완료되고 제1장 제14규칙 (d)항의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의 이서
 Endorsement where the renewal survey has been completed and regulation
 I/14(d)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므로 협약의 제1장 제14규칙 (d)항에 따라
 _____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nd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d)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 _____

날 짜

Date : _____

제1장 제14규칙 (e)항 또는 (f)항이 적용되는 경우 검사예정항 도착 시까지 또는
 유예기간 동안에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validity of the certificate until reaching the port of
 survey or for a period of grace where regulation I/14(e) or I/14(f) applies

이 증서는 협약의 제1장 제14규칙 (e)항*/제1장 제14규칙 (f)항*의 규칙에 따라
 _____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e)*/I/14(f)*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 _____

날 짜

Date : _____

*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5면)

여객선안전증서에 대한 설비기록부(양식P)

RECORD OF EQUIPMENT FOR THE PASSENGER SHIP SAFETY (FORM P)

이 기록부는 여객선 안전증서에 영구적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This Record shall be permanently attached to the Passenger Ship Safety Certificate.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및 개정서에 따른 설비의 기록부

RECORD OF EQUIPMENT FOR COMPLIANCE WITH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AS AMENDED

1. 선박의 세부사항

PARTICULARS OF SHIP

선 명

Name of ship _____

선 박 번 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_____

여 객 정 원

Number of passengers for which certified _____

무선설비 조작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최소인원

Minimum number of persons with required qualifications to operate the radio installations _____

2. 구명설비의 상세

DETAILS OF LIFE-SAVING APPLIANCES

1. 구명설비가 제공되는 총인원 Total number of persons for which life-saving appliances are provided: _____					
항목 Item	좌현 Port side	우현 Starb'd side	항목 Item	좌현 Port side	우현 Starb'd side
2. 구명정 총수 Total number of lifeboats			3.1 탐조등을 갖춘 구명정의 수 Number of lifeboats fitted with searchlights		
2.1 구명정에 수용되는 총인원 Total number of persons accommodated by them					
2.2 부분폐형 구명정의 수 (제3장 제21규칙 및 LSA Code 4.5) Number of partially enclosed life-boats(regulation III/21 and LSA Code, section 4.5)			4. 구조정의 수 Number of rescue boats		
			4.1 위의 구명정 총수에 포함된 구조정의 수 Number of boats which are included in the total life-boats shown above		
2.3 자체복원식 부분폐형 구명정의 수(제3장 제43규칙*) Number of self-righting partially enclosed lifeboats(regulation III/43*)			4.2 고속구조정의 수 Number of boats which are fast rescue boats		
			5. 구명뗏목 Liferafts		
2.4 전폐형 구명정의 수 (제3장 제21규칙 및 LSA Code 4.6) Number of totally enclosed life-boats (regulation III/21 and LSA Code, section 4.6)			5.1 승인된 진수장치가 필요한 구명뗏목 Those for which approved launching appliances are required		
			5.1.1 구명뗏목의 수 Number of liferafts		
2.5 그 밖의 구명정 Other lifeboats			5.1.2 수용인원 Number of persons accommodated by them		
2.5.1 구명정의 수 Number					
2.5.2 종류 Type			5.2 승인된 진수장치가 필요없는 구명뗏목 Those for which approved launching appliances are not required		
3. 모터 구명정의 수(위의 구명정 총수에 포함) Number of motor lifeboats (included in the total life-boats shown above)			5.2.1 구명뗏목의 수 Number of liferafts		
			5.2.2 수용인원 Number of persons accommodated by them		

* 자체복원식 부분폐형구명정을 설치한 선박의 경우 1986년 7월 1일부터 1998년 7월 1일까지 사이에 건조된 선박에 적용되는 협약 1983 개정안(MSC.6(48))을 참고할 것

Refer to the 1983 amendments to SOLAS (MSC.6(48)), applicable to ships constructed on or after 1 July 1986, but before 1 July 1998 in the case of self-righting partially enclosed lifeboat(s) on board.

2. 구명설비의 상세(계속)

DETAILS OF LIFE-SAVING APPLIANCES(Continued)

항목 Item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항목 Item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6. 강하식 탑승장치의 수 Number of Marine Evacuation Systems(MES)		9. 총구명조끼의 수 Number of lifejackets(total)	
6.1 강하식 탑승장치에 의하여 탑승하는 구명뗏목의 수 Number of liferafts served by them		9.1 성인용 Number of adult lifejackets	
6.2 수용인원 Number of persons accommodated by them		9.2 어린이용 Number of child lifejackets	
7. 구명부기(救命浮器) Buoyant apparatus		9.3 유아용 Number of infant lifejackets	
7.1 구명부기의 수 Number of apparatus		10. 방수복의 수 Number of immersion suits	
7.2 구명부기를 사용하는 전체 인원수 Number of persons capable of being supported		11. 노출보호복의 수 Number of anti-exposure suits	
8. 구명부환(救命浮環)의 수 Number of lifebuoys		12. 보온구의 수* Number of thermal protective aids*	

* LSA Code 4.1.5.1.24, 4.4.8.31 및 5.1.2.2.13항에 따라 요구되는 것은 제외

Excluding those required by the LSA Code, paragraphs 4.1.5.1.24; 4.4.8.31 and 5.1.2.2.13.

(8면)

3. 무선설비의 상세

DETAILS OF RADIO FACILITIES

항목 Item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항목 Item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1. 기본장치 Primary systems		1.4 인정된 이동식 위성 서비스 선박지구국 Recognized mobile satellite service ship earth station	
1.1 VHF 무선설비 VHF radio installation		2. 선박-해안 간 조난 경보 전송을 개시하는 제2차 경보장치 Secondary means of initiating the transmission of ship-to-shore distress alerts	
1.1.1 DSC(Digital Selective Calling: 디지털선택호출) 인코더 DSC encoder		3. 해상안전정보(MSI), 수색 및 구조 관련 정보의 수신을 위한 설비 Facilities for reception of MSI and search and rescue related information	
1.1.2 DSC 수신기 DSC watch receiver		4.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 Radio Beacon(EPIRB)	
1.1.3 무선전화 Radiotelephony		5. 양방향 VHF 무선전화장비 Two-way VHF radiotelephone apparatus	
1.2 MF 무선설비 MF radio installation		5.1 휴대용 Two-way VHF 무선전화장비 Portable two-way VHF radiotelephone apparatus	
1.2.1 DSC 인코더 DSC encoder		5.2 생존정에 장착된 양방향 VHF 무선전화 장비 Two-way VHF radiotelephone apparatus fitted in survival craft	
1.2.2 DSC 수신기 DSC watch receiver		6. 수색 및 구조 위치확인장치 Search and rescue locating devices	
1.2.3 무선전화 Radiotelephony		6.1 생존정에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비치된 레이더 수색 및 구조 트랜스폰더 Radar search and rescue transponders (radar SART) stowed for rapid placement in survival craft	
1.3 MF/HF 무선설비 MF/HF radio installation		6.2 생존정에 비치된 레이더 수색 및 구조 트랜스폰더 Radar search and rescue transponders(radar SART) stowed in survival craft	
1.3.1 DSC 인코더 DSC encoder		6.3 생존정에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비치된 AIS 수색 및 구조 송신기 AIS search and rescue transmitters(AIS-SART) stowed for rapid placement survival craft	
1.3.2 DSC 수신기 DSC watch receiver		6.4 생존정에 비치된 AIS 수색 및 구조 송신기 AIS search and rescue transmitters(AIS-SART) stowed in survival craft	
1.3.3 무선전화 Radiotelephony			

4. 무선설비의 이용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법(제4장 제15규칙 6항 및 7항)

METHODS USED TO ENSURE AVAILABILITY OF RADIO FACILITIES (REGULATIONS IV/15.6 AND 15.7)

4.1 설비의 이중화

Duplication of equipment

4.2 육상정비

Shore-based maintenance

4.3 선상정비능력

At-sea maintenance capability

5. 항해장비 및 설비의 상세
DETAILS OF NAVIGATIONAL SYSTEM AND EQUIPMENT

항목 Item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항목 Item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1.1 기준자기 컴퍼스* Standard magnetic compass*		3.6 제2 자동추적장치* Second automatic tracking aid*	
1.2 예비의 자기 컴퍼스* Spare magnetic compass*		3.7 플로팅설비* Electronic plotting aid	
1.3 자이로 컴퍼스* Gyro compass*		4.1 자동식별장치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AIS)	
1.4 자이로 컴퍼스 선수 리피터* Gyro compass heading repeater*		4.2 장거리 식별 및 추적장치 Long-range identification and tracking system	
1.5 자이로 컴퍼스 방위 리피터* Gyro compass bearing repeater*		5 항해자료기록장치** Voyage data recorder(VDR)**	
1.6 선수 또는 항적 제어장치* Heading or track control system*		6.1 선속거리계(대수속력)* Speed and distance measuring device (through the water)*	
1.7 방위환 또는 컴퍼스 방위장치* Pelorus or compass bearing device*		6.2 선속거리계(대지속력)* Speed and distance measuring device (over the ground in the forward and athwartship direction)*	
1.8 선수방위 수정 장치 Means of correcting heading and bearing		7 음향측심기* Echo sounding device*	
1.9 선수방위 발신기* Transmitting heading device(THD)*		8.1 타각지시기 등* Rudder, propeller, thrust, pitch and operational mode indicator*, **	
2.1 해도/전자해도 표시 및 정보시스템** Nautical chart/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ECDIS)**		8.2 회두각 속도계* Rate of turn indicator*	
2.2 ECDIS의 이중화 Back up arrangement for ECDIS		9 음향수신장치* Sound reception system*	
2.3 항해용간행물 Nautical publications		10 비상조타실의 전화* Telephone to emergency steering position*	
2.4 전자 항해용간행물의 이중화 Back up arrangement for electronic nautical publications		11 주간신호등* Daylight signalling lamp*	
3.1 위성항법장치/지상파무선항해장치용 수신기/다중무선항해장치용 수신기*, ** Receiver for a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terrestrial radio navigation system/multi-system shipborne radionavigation receiver*, **		12 레이더 반사기* Radar reflector*	
3.2 9 GHz 항해용 레이더* 9 GHz radar*		13 국제신호서 International code of signals	
3.3 제2항해용레이더(3GHz/9 GHz**)* Second radar(3 GHz/9 GHz**)*		14 국제항공 및 해상수색구조 매뉴얼 제3권 IAMSAR Manual, Volume III	
3.4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 Automatic radar plotting aid (ARPA)*		15 선교항해당직경보장치 Bridge Navigational Watch Alarm System (BNWAS)	

* 제5장 제19규칙에 따라 이 요건에 대한 대체설비는 허용된다. 그 밖의 설비의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Alternative means of meeting this requirement are permitted under regulation V/19. In case of other means they shall be specified.

**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이 기록부는 모든 점에서 정확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is Record is correct in all respects.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_____ on the _____ day of _____.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글 및 영문)
선 급 법 인 명(한글 및 영문)

직인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6. 8. 25.>

(1면)

증서번호 제 _____ 호
Cert. No. _____

원 자 력 여 객 선 안 전 증 서

NUCLEAR PASSENGER SHIP SAFETY CERTIFICATE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이 증서에는 여객선안전설비기록부(양식 P)를 추가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This certificate shall be supplemented by a Record of Equipment for Passenger Ship Safety(Form P).

국 제* 항해에 대한 것
단국제*
for $\frac{\text{an}^*}{\text{a short}^*}$ international voyage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as amend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by _____.

선 명 Name of Ship	선박번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선 적 항 Port of Registry	총톤수 Gross Tonnage	선박의 운항구역 (제IV장 제2규칙)** Sea areas in which ship is certified to operate(regulation IV/2)**	IMO 번호*** IMO Number***

건조일 :

Date of build:

- 건조 계약일
Date of building contract
- 용골(선박 바닥 중앙의 길이 방향 지지대)이 거치되거나 또는 그와 동등한 건조 단계에 달한 날
Date on which keel was laid or ship was at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 인도일
Date of delivery
- 해당되는 경우, 주요 특성의 개조나 변경 또는 수정작업의 시작일
Date on which work for a conversion or an alteration or modification of a major character was commenced (where applicable)

적용 가능한 모든 일자를 기재할 것.

All applicable dates shall be completed.

이 증서는 다음 사항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 이 선박은 협약의 제8장 제9규칙의 요건에 따라서 검사되었음
That the ship has been survey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regulation VIII/9 of the Convention.
- 이 원자력선박은 협약 제8장의 모든 요건을 갖추었고, 해당 선박의 안전도평가 결과와 일치함
That the ship, being a nuclear ship, complied with all the requirements of chapter VIII of the Convention and conformed to the Safety Assessment approved for the ship; and that:

2.1 아래 사항에 관한 협약 상의 요건을 갖추었음:

the ship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s regards:

*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 A3 해역에서 운항할 수 있도록 인증된 선박의 경우, 인정된 이동식 위성서비스를 괄호 안에 표시할 것

** For a ship certified to operate in sea area A3, indicate the recognized mobile satellite service in brackets.

*** IMO에서 Res. A.600(15)로 채택된 IMO 선박식별번호계획에 따른 것

*** In accordance with IMO ship identification number scheme adopted by the Organization by resolution A.600(15)

(2면)

- .1 원자력 추진기, 충돌보호 구조물을 포함한 구조, 주기관, 보조기관, 보일러 및 그 밖의 압력용기:
the structure, main and auxiliary machinery, boilers and other pressure vessels including the nuclear propulsion plant and the collision protective structure;
- .2 수밀구획의 배치 및 상세:
the watertight subdivision arrangements and details;
- .3 다음의 구획만재출수선:
the following subdivision load lines:

선측의 중앙부에 지정되고 표시된 구획만재출수선(제II-1장 제18규칙 ***) Subdivision load lines assigned and marked on the ship's side amidships (regulation II-1/18 ****)	건 현 Freeboard	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있는 다음의 장소가 여객을 적재하는 장소에 포함되는 경우에 적용할 것. To apply when the spaces in which passengers are carried include the following alternative spaces
P. 1	_____	_____
P. 2	_____	_____
P. 3	_____	_____

2.2 _____을(를) 연료로 사용함으로써 협약의 제II-1장 G편 요건을 갖추* /해당사항 없음*
the ship complied with part G of chapter II-1 of the Convention using _____as fuel* /N.A.*

2.3 방화구조, 화재안전장치 및 설비와 화재제어도는 협약의 요건에 적합함:
the ship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s regards structural fire protection, fire safety systems and appliances and fire control plans:

2.4 구명설비와 구명정, 구명뗏목 및 구조정의 의장품을 이 협약의 요건에 따라 비치하고 있음:
the life-saving appliances and the equipment of lifeboats, liferafts and rescue boats were provid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2.5 협약의 요건에 따라 구명줄 발사기를 비치하고 있음:
the ship was provided with a line-throwing appliance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2.6 무선설비가 협약의 요건에 적합함:
the ship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s regards radio installations:

2.7 구명설비용 무선설비의 공급과 기능이 협약의 요건에 적합함:
the provision and the functioning of the radio installations used in life-saving appliances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2.8 선박용 항해설비, 도선사용 승하선 장치 및 항해용 간행물이 협약의 요건에 적합함:
the ship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s regards shipborne navigational equipment, means of embarkation for pilots and nautical publications :

2.9 이 협약 및 현행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의 요건에 따라 음향신호와 조난신호의 수단, 등화 및 형상물을 비치하고 있음:
the ship was provided with lights, shapes, means of making sound signals and distress signals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nd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in force:

2.10 그 밖의 모든 점에서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함
in all other respects the ship complied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 2009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구획부호 "C.1, C.2 및 C.3"이 사용되어야 함.

For ships constructed before 1 January 2009, the applicable subdivision notation "C.1, C.2 and C.3" should be used.

(3면)

2.11 이 선박은 협약 제II-1장 제55규칙*/제II-2장 제17규칙*/III장 제38규칙*에 따른 대체설계 및 배치가 적용되었음*/적용되지 않았음*:

the ship was*/was not* subjected to an alternative design and arrangements in pursuance of regulation(s) II-1/55*/II-2/17*/III/38* of the Convention;

2.12 기관 및 전기설비*/방화설비*/구명설비*에 대한 대체설계 및 배치의 승인서류가 이 증서에 첨부되었음*/첨부되지 않았음*.

a Document of approval of alternative design and arrangements for machinery and electrical installations*/fire protection*/life-saving appliances and arrangements* is*/is not* appended to this Certificate.

3. 면제증서가 발행되었음*/발행되지 않았음*.

That an Exemption Certificate has*/has not* been issued.

이 증서는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 유효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_____day of _____.

이 증서 발급을 위한 검사완료일:

Completion date of the survey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_____ on the _____day of _____.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글 및 영문)
선 급 법 인 명(한글 및 영문)

직인

*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4면)

여객선안전증서에 대한 설비기록부(양식P)

RECORD OF EQUIPMENT FOR THE PASSENGER SHIP SAFETY (FORM P)

이 기록부는 여객선 안전증서에 영구적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This Record shall be permanently attached to the Passenger Ship Safety Certificate.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및 개정서에 따른 설비의 기록부

RECORD OF EQUIPMENT FOR COMPLIANCE WITH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AS AMENDED

1. 선박의 세부사항

PARTICULARS OF SHIP

선 명

Name of ship _____

선 박 번 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_____

여 객 정 원

Number of passengers for which certified _____

무선설비 조작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최소인원

Minimum number of persons with required qualifications to operate the radio installations _____

2. 구명설비의 상세

DETAILS OF LIFE-SAVING APPLIANCES

1. 구명설비가 제공되는 총인원 Total number of persons for which life-saving appliances are provided: _____					
항목 Item	좌현 Port side	우현 Starb'd side	항목 Item	좌현 Port side	우현 Starb'd side
2. 구명정 총수 Total number of lifeboats			3.1 탐조등을 갖춘 구명정의 수 Number of lifeboats fitted with searchlights		
2.1 구명정에 수용되는 총인원 Total number of persons accommodated by them					
2.2 부분폐형 구명정의 수 (제3장 제21규칙 및 LSA Code 4.5) Number of partially enclosed life-boats(regulation III/21 and LSA Code, section 4.5)			4. 구조정의 수 Number of rescue boats		
			4.1 위의 구명정 총수에 포함된 구조정의 수 Number of boats which are included in the total life-boats shown above		
2.3 자체복원식 부분폐형 구명정의 수(제3장 제43규칙*) Number of self-righting partially enclosed lifeboats(regulation III/43*)			4.2 고속구조정의 수 Number of boats which are fast rescue boats		
			5. 구명뗏목 Liferafts		
2.4 전폐형 구명정의 수 (제3장 제21규칙 및 LSA Code 4.6) Number of totally enclosed life-boats(regulation III/21 and LSA Code, section 4.6)			5.1 승인된 진수장치가 필요한 구명뗏목 Those for which approved launching appliances are required		
			5.1.1 구명뗏목의 수 Number of liferafts		
2.5 그 밖의 구명정 Other lifeboats			5.1.2 수용인원 Number of persons accommodated by them		
2.5.1 구명정의 수 Number					
2.5.2 종류 Type			5.2 승인된 진수장치가 필요없는 구명뗏목 Those for which approved launching appliances are not required		
3. 모터 구명정의 수(위의 구명정 총수에 포함) Number of motor lifeboats (included in the total lifeboats shown above)			5.2.1 구명뗏목의 수 Number of liferafts		
			5.2.2 수용인원 Number of persons accommodated by them		

* 자체복원식 부분폐형구명정을 설치한 선박의 경우 1986년 7월 1일부터 1998년 7월 1일까지 사이에 건조된 선박에 적용되는 협약 1983 개정안(MSC.6(48))을 참고할 것

Refer to the 1983 amendments to SOLAS (MSC.6(48)), applicable to ships constructed on or after 1 July 1986, but before 1 July 1998 in the case of self-righting partially enclosed lifeboat(s) on board.

2. 구명설비의 상세(계속)

DETAILS OF LIFE-SAVING APPLIANCES(Continued)

항목 Item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항목 Item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6. 강하식 탑승장치의 수 Number of Marine Evacuation Systems(MES)		9. 총구명조끼의 수 Number of lifejackets(total)	
6.1 강하식 탑승장치에 의하여 탑승하는 구명뗏목의 수 Number of liferafts served by them		9.1 성인용 Number of adult lifejackets	
6.2 수용인원 Number of persons accommodated by them		9.2 어린이용 Number of child lifejackets	
7. 구명부기(救命浮器) Buoyant apparatus		9.3 유아용 Number of infant lifejackets	
7.1 구명부기의 수 Number of apparatus		10. 방수복의 수 Number of immersion suits	
7.2 구명부기를 사용하는 전체 인원수 Number of persons capable of being supported		11. 노출보호복의 수 Number of anti-exposure suits	
8. 구명부환(救命浮環)의 수 Number of lifebuoys		12. 보온구의 수* Number of thermal protective aids*	

- * LSA Code 4.1.5.1.24, 4.4.8.31 및 5.1.2.2.13항에 따라 요구되는 것은 제외
Excluding those required by the LSA Code, paragraphs 4.1.5.1.24; 4.4.8.31 and 5.1.2.2.13.

(7면)

3. 무선설비의 상세

DETAILS OF RADIO FACILITIES

항목 Item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항목 Item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1. 기본장치 Primary systems		1.4 인정된 이동식 위성 서비스 선박 지구국 Recognized mobile satellite service ship earth station	
1.1 VHF 무선설비 VHF radio installation		2. 선박-해안 간 조난 경보 전송을 개시하는 제2차 경보장치 Secondary means of initiating the transmission of ship-to-shore distress alerts	
1.1.1 DSC(Digital Selective Calling:디지털선택호출) 인코더 DSC encoder		3. 해사안전정보(MSI), 수색 및 구조 관련 정보의 수신을 위한 설비 Facilities for reception of MSI and search and rescue related information	
1.1.2 DSC 수신기 DSC watch receiver		4.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 Emergency Position Indication Radio Beacon(EPIRB)	
1.1.3 무선전화 Radiotelephony		5. 양방향 VHF 무선전화장비 Two-way VHF radiotelephone apparatus	
1.2 MF 무선설비 MF radio installation		5.1 휴대식 Two-way VHF 무선전화장비 Portable two-way VHF radiotelephone apparatus	
1.2.1 DSC 인코더 DSC encoder		5.2 구조정에 비치된 양방향 VHF 무선전화장비 Two-way VHF radiotelephone apparatus fitted in survival craft	
1.2.2 DSC 수신기 DSC watch receiver		6. 수색 및 구조 위치확인장치 Search and rescue locating devices	
1.2.3 무선전화 Radiotelephony		6.1 생존정에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비치된 레이더 수색 및 구조 트랜스폰더 Radar search and rescue transponders (radar SART) stowed for rapid placement in survival craft	
1.3 MF/HF 무선설비 MF/HF radio installation		6.2 생존정에 비치된 레이더 수색 및 구조 트랜스폰더 Radar search and rescue transponders(radar SART) stowed in survival craft	
1.3.1 DSC 인코더 DSC encoder		6.3 생존정에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비치된 AIS 수색 및 구조 송신기 AIS search and rescue transmitters(AIS-SART) stowed for rapid placement survival craft	
1.3.2 DSC 수신기 DSC watch receiver			
1.3.3 무선전화 Radiotelephony		6.4 생존정에 비치된 AIS 수색 및 구조 송신기 AIS search and rescue transmitters(AIS-SART) stowed survival craft	

4. 무선설비의 이용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법(제IV장 제15규칙 6항 및 7항)

METHODS USED TO ENSURE AVAILABILITY OF RADIO FACILITIES (REGULATIONS IV/15.6 AND 15.7)

4.1 설비의 이중화

Duplication of equipment

4.2 육상정비

Shore-based maintenance

4.3 선상정비능력

법제처 At-sea maintenance capability

5. 항해장비 및 설비의 상세

DETAILS OF NAVIGATIONAL SYSTEM AND EQUIPMENT

항목 Item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항목 Item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1.1 기준자기 컴퍼스* Standard magnetic compass*		3.6 제2 자동추적장치* Second automatic tracking aid*	
1.2 예비의 자기 컴퍼스* Spare magnetic compass*		3.7 플로팅설비* Electronic plotting aid	
1.3 자이로 컴퍼스* Gyro compass*		4.1 자동식별장치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AIS)	
1.4 자이로 컴퍼스 선수 리피터* Gyro compass heading repeater*		4.2 장거리 식별 및 추적장치 Long-range identification and tracking system	
1.5 자이로 컴퍼스 방위 리피터* Gyro compass bearing repeater*		5 항해자료기록장치** Voyage data recorder(VDR)**	
1.6 선수 또는 항적 제어장치* Heading or track control system*		6.1 선속거리계(대수속력)* Speed and distance measuring device (through the water)*	
1.7 방위환 또는 컴퍼스 방위장치* Pelorus or compass bearing device*		6.2 선속거리계(대지속력)* Speed and distance measuring device (over the ground in the forward and athwartship direction)*	
1.8 선수방위 수정 장치 Means of correcting heading and bearing		7 음향측심기* Echo sounding device*	
1.9 선수방위 발신기* Transmitting heading device(THD)*		8.1 타각지시기 등* Rudder, propeller, thrust, pitch and operational mode indicator*, **	
2.1 해도/전자해도 표시 및 정보시스템** Nautical chart/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ECDIS)**		8.2 회두각 속도계* Rate of turn indicator*	
2.2 ECDIS의 이중화 Back up arrangement for ECDIS		9 음향수신장치* Sound reception system*	
2.3 항해용간행물 Nautical publications		10 비상조타실의 전화* Telephone to emergency steering position*	
2.4 전자 항해용간행물의 이중화 Back up arrangement for electronic nautical publications		11 주간신호등* Daylight signalling lamp*	
3.1 위성항법장치/지상파무선항해장치용 수신기/다중무선항해장치용 수신기*, ** Receiver for a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terrestrial radio navigation system/multi-system shipborne radionavigation receiver*, **		12 레이더 반사기* Radar reflector*	
3.2 9 GHz 항해용 레이더* 9 GHz radar*		13 국제신호서 International code of signals	
3.3 제2항해용레이더(3GHz/9 GHz**)* Second radar(3 GHz/9 GHz**)*		14 국제항공 및 해상수색구조 매뉴얼 제3권 IAMSAR Manual, Volume III	
3.4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 Automatic radar plotting aid (ARPA)*		15 선교항해당직경보장치 Bridge Navigational Watch Alarm System (BNWAS)	
3.5 자동추적장치* Automatic tracking aid			

* 제5장 제19규칙에 따라 이 요건에 대한 대체설비는 허용된다. 그 밖의 설비의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Alternative means of meeting this requirement are permitted under regulation V/19. In case of other means they shall be specified.

**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이 기록부는 모든 점에서 정확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is Record is correct in all respects.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_____ on the _____ day of _____.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글 및 영문)
선 급 법 인 명(한글 및 영문)

직인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3. 7. 11.>

(1면)

증서번호 제 _____ 호

Cert. No. _____



화 물 선 안 전 무 선 증 서

CARGO SHIP SAFETY RADIO CERTIFICATE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이 증서에는 화물선 안전무선설비기록부(양식 R)를 추가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This certificate shall be supplemented by a Record of Equipment for Cargo Ship Safety Radio(Form R).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및 같은 협약에 관한 1988년 의정서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as modified by the Protocol of 1988 relating thereto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by

선 명 Name of Ship	선 박 번 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선 적 항 Port of Registry	총톤수 Gross Tonnage	선박의 운항구역 (제IV장 제2규칙) Sea areas in which ship is certified to operate(regulation IV/2)	IMO번호 IMO Number

용골 거치일 또는 이와 동등한 건조단계일, 또는 해당되는 경우 주요 특성의 개조나 변경 또는 수정작업의 시작일;

Date on which keel was laid or ship was at a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or, where applicable, date on which work for a conversion or an alteration or modification of a major character was commenced;

이 증서는 다음 사항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1. 이 선박은 협약의 제 I 장 제9규칙의 요건에 따라서 검사되었음

That the ship has been survey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regulation I/9 of the Convention.

2. 검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That the survey showed that:

21 이 선박은 무선설비에 관하여 협약의 요건에 적합함:

The ship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s regards radio installations;

22 구명설비용 무선설비의 공급 및 기능이 협약의 요건에 적합함:

The provision and functioning of the radio installations used in life-saving appliances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3. 면제증서가 발행되었음*/발행되지 않았음*

That an Exemption Certificate has*/has not* been issued.

이 증서는 협약의 제 I 장 제9규칙에 따라 정기적 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 유효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_____ day of _____ subject to the periodical surveys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9 of the Convention.

이 증서 발급을 위한 검사완료일:

Completion date of the survey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 _____

(2 면)

____년 ____월 ____일 _____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_____ on the _____ day of _____.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 국 해 양 교 통 안 전 공 단(한 글 및 영 문)

선 급 법 인 명(한 글 및 영 문)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210mm x 297mm[보존용지(1종) 220g/m²]

(3 면)

검 사 의 이 서 ENDORSEMENT FOR PERIODICAL SURVEYS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제 I 장 제9규칙에 따라 요구되는 검사 결과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 survey required by regulation 1/9 of the Convention,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정기적 검사
Periodic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정기적 검사
Periodic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Date: _____

정기적 검사
Periodic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정기적 검사
Periodic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4 면)

제I장 제14규칙 (h)(iii)항에 따른 정기적 검사
Periodical Survey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h) (iii)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제I장 제14규칙 (h) (iii)항에 따른 정기적 검사의 결과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 periodical survey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h) (iii) of the Convention,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제I장 제14규칙 (c)항이 적용되는 경우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일 때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certificate if valid for less
than 5 years where regulation I/14(c)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므로 협약의 제I장 제14규칙 (c)항에 따라
_____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nd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c)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정기검사 완료 후 제I장 제14규칙 (d)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이서
Endorsement where the renewal survey has been completed and regulation
I/14(d)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므로 협약의 제I장 제14규칙 (d)항에 따라
_____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nd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d)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5 면)

제I장 제14규칙 (e)항 또는 (f)항이 적용되는 경우 검사예정항 도착 시까지 또는
유예기간까지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validity of the certificate until reaching the port
of survey or for a period of grace where regulation I/14(e) or I/14(f) applies

이 증서는 협약의 제I장 제14규칙 (e)항*/제I장 제14규칙 (f)항*에 따라
_____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e)*/I/14(f)*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제I장 제14규칙 (h)항이 적용되는 경우 연차일을 앞당기는 것에 대한 이서
Endorsement for advancement of anniversary date where regulation I/14(h) applies

협약의 제I장 제14규칙 (h)항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_____입니다.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h) of the Convention, the new anniversary date is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협약의 제I장 제14규칙 (h)항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_____입니다.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h) of the Convention, the new anniversary date is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6 면)

화물선안전무선증서에 대한 설비기록부(양식R)
RECORD OF EQUIPMENT FOR THE CARGO SHIP SAFETY RADIO
CERTIFICATE(FORM R)

이 기록부는 화물선안전무선증서에 영구적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This Record shall be permanently attached to the Cargo Ship Safety Radio Certificate.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및 개정서에 따른 설비의 기록부

RECORD OF EQUIPMENT FOR COMPLIANCE WITH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as amended

1. 선박의 세부사항
PARTICULARS OF SHIP

선 명

Name of ship _____

선 박 번 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_____

무선설비 조작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최소인원

Minimum number of persons with required qualifications to operate the radio installations _____

2. 무선설비의 상세
DETAILS OF RADIO FACILITIES

항 목 Item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1. 기본장치 Primary systems	
1.1 VHF 무선설비 VHF radio installation	
1.1.1 DSC 인코더 DSC encoder	
1.1.2 DSC 수신기 DSC watch receiver	
1.1.3 무선전화 Radiotelephony	
1.2 MF 무선설비 MF radio installation	
1.2.1 DSC 인코더 DSC encoder	
1.2.2 DSC 수신기 DSC watch receiver	
1.2.3 무선전화 Radiotelephony	
1.3 MF/HF 무선설비 MF/HF radio installation	
1.3.1 DSC 인코더 DSC encoder	
1.3.2 DSC 수신기 DSC watch receiver	
1.3.3 무선전화 Radiotelephony	
1.4 인정된 이동식 위성 서비스 선박지구국 Recognized mobile satellite service ship earth station	

(7 면)

항 목(Item)	실제조치(Actual provision)
2. 선박-육상 간 조난 경보 전송을 개시하는 제2차 경보장치 (Secondary means of initiating the transmission of ship-to-shore distress alerts)	
3. 해상안전정보(MSI), 수색 및 구조 관련 정보의 수신을 위한 설비 (Facilities for reception of MSI and search and rescue related information)	
4.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 Emergency Position Indication Radio Beacon(EPIRB)	
5. 양방향 VHF 무선전화장비(Two-way VHF radiotelephone apparatus)	
5.1 휴대용 양방향 VHF 무선전화장비(Portable two-way VHF radiotelephone apparatus)	
5.2 생존선에 장착된 양방향 VHF 무선전화장비(Two-way VHF radiotelephone apparatus fitted in survival craft)	
6. 수색 및 구조 위치확인장치(Search and rescue locating device)	
6.1 생존선에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비치된 레이더 수색 및 구조 트랜스폰더(Radar search and rescue transponders (radar SART) stowed for rapid placement in survival craft)	
6.2 생존선에 비치된 레이더 수색 및 구조 트랜스폰더(Radar search and rescue transponders (radar SART) stowed in survival craft)	
6.3 생존선에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비치된 AIS 수색 및 구조 송신기(AIS search and rescue transmitter(AIS-SART) stowed for rapid placement in survival craft)	
6.4 생존선에 비치된 AIS 수색 및 구조 송신기(AIS search and rescue transmitter(AIS-SART) stowed in survival craft)	

3. 무선설비의 이용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법(제IV장 제15규칙 6항 및 7항)

METHODS USED TO ENSURE AVAILABILITY OF RADIO FACILITIES (REGULATION IV/15.6 AND 15.7)

3.1 설비의 이중화

Duplication of equipment_____

3.2 육상정비

Shore-based maintenance_____

3.3 선상정비능력

At-sea maintenance capability_____

이 기록부는 모든 점에서 정확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is Record is correct in all respects.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_____ on the _____ day of _____.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인]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 국 해 양 교 통 안 전 공 단(한 글 및 영 문)

선 급 법 인 명(한 글 및 영 문)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 6. 17.>

(1면)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_____



화 물 선 안 전 구 조 증 서

CARGO SHIP SAFETY CONSTRUCTION CERTIFICATE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및 같은 협약에 관한 1988년 의 정서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as modified by the Protocol of 1988 relating thereto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by

선 명 Name of Ship	선 박 번 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선 적 항 Port of Registry	총 톤 수 Gross Tonnage	재화중량톤수(미터 톤)* Deadweight (metric tons)*	IMO 번 호 IMO Number

선박의 종류**

Type of Ship**

산적화물선

유조선

케미칼 탱커

가스캐리어

Bulk carrier

Oil tanker

Chemical tanker

Gas carrier

그 밖에 위의 이외의 화물선

Cargo ship other than any of the above

건조일 :

Date of build:

- 건조 계약일

Date of building contract

- 용골이 거치되거나 또는 그와 동등의 건조 단계에 달한 날

Date on which keel was laid or ship was at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 인도일

Date of delivery

- 해당되는 경우, 주요 특성의 개조나 변경 또는 수정작업의 시작일

Date on which work for a conversion or an alteration or modification of a major character was commenced (where applicable)

적용 가능한 모든 일자를 기재할 것.

All applicable dates shall be completed.

이 증서는 다음 사항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1. 이 선박의 협약의 제 1 장 제10규칙의 요건에 따라서 검사되었음

That the ship has been survey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regulation 1/10 of the Convention.

* 유조선, 케미칼 탱커 및 가스캐리어에만 사용

For oil tankers, chemical tankers and gas carriers only

* 법제처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을 것.

(2면)

2.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That the survey showed that:

- .1 위의 규칙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구조, 기관 및 설비가 만족스러운 상태에 있으며
협약 제II-1장 및 제II-2장의 관련 요건을 갖추(화재안전장치 및 설비, 화재제어
도에 관한 사항은 제외);

the condition of the structure, machinery and equipment as defined in the above regulation was satisfactory and that the ship complied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chapters II-1 and II-2 of the Convention (other than those relating to fire safety systems and appliances and fire control plans);

- .2 이 선박은 _____을(를) 연료로 사용함으로써 협약 제II-1장 G편의 요건
을 갖추* /해당사항 없음*

the ship complied with part G of chapter II-1 of the Convention using _____ as fuel* /N.A.*

3. 선저외판에 대한 최근 2회의 검사는 _____ 및 _____에 실시되었음

That the last two inspections of the outside of the ship's bottom took place on _____
and _____.

4. 면제증서가 발행되었음*/발행되지 아니하였음*

That an Exemption Certificate has*/has not* been issued.

5. 이 선박은 협약 제II-1장 제55규칙*/II-2장 제17규칙*에 따른 대체설계 및 배치가
적용되었음*/적용되지 않았음*;

The ship was*/was not* subjected to an alternative design and arrangements in pursuance of regulation(s) II-1/55*/II-2/17* of the Convention;

6. 기관 및 전기설비*/화재안전*에 대한 대체설계 및 배치의 승인서류가 이 증서에
첨부되었음*/첨부되지 않았음*.

A Document of approval of alternative design and arrangements for machinery and electrical installations*/fire safety* is*/is not* appended to this Certificate.

이 증서는 협약 제장 제10규칙에 따라서 연차검사, 중간검사 및 선저외판의 검사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 유효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_____ day of _____ subject to the annual and intermediate surveys and inspections of the outside of the ship's bottom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0 of the Convention.

이 증서 발급을 위한 검사완료일:

Completion date of the survey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_____ on the _____ day of _____.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글 및 영문)
선 급 법 인 명(한글 및 영문)

직인

(3면)

검 사 의 확 인
ENDORSEMENT FOR ANNUAL AND INTERMEDIATE SURVEYS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제 1 장 제10규칙에 따른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 survey required by regulation 1/10 of the Convention,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연 차 검 사
Annu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연차*/중간* 검사
Annual*/Intermediate*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연차*/중간* 검사
Annual*/Intermediate*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연 차 검 사
Annu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4면)

제1장 제14규칙 (h)(iii)항에 따른 연차검사/중간검사
Annual/intermediate survey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h)(iii)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제1장 제14규칙 (h)(iii)항에 따른 연차검사*/중간검사*의 결과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n annual*/intermediate* survey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h)(iii) of the Convention,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Convention.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선저외판의 검사에 대한 확인**
Endorsement for inspections of the outside of ship's bottom**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제1장 제10규칙에 의하여 요구되는 검사결과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n inspection required by regulation I/10 of the Convention,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제1차 검사
First inspection: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제2차 검사
Second inspection: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제1장 제14규칙 (c)항이 적용되는 경우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일 때 증서를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certificate if valid for less than 5 years where regulation I/14(c)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므로 협약의 제1장 제14규칙 (c)항에 따라서 _____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nd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c)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 법제처의 인 검사를 위하여 규정을 제정할 수 있음
Provision may be made for additional inspections.

(5면)

정기검사가 완료되고 제1장 제14규칙 (d)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이서
 Endorsement where the renewal survey has been completed and regulation I/14(d)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므로 제1장 제14규칙 (d)항에 따라서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nd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d)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제1장 제14규칙 (e)항 또는 (f)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검사예정항에
 도착시까지 또는 유예기간까지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validity of the certificate until reaching the port
 of survey or a period of grace where regulation I/14(e) or I/14(f) applies

이 증서는 협약의 제1장 제14규칙 (e)항*/제1장 제14규칙 (f)항*에 따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e)*/I/14(f)*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제1장 제14규칙 (h)항이 적용되는 경우 연차일을 앞당기는 것에 대한 이서
 Endorsement for advancement of anniversary date where regulation I/14(h) applies

협약의 제1장 제14규칙 (h)항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_____ 입
 니다.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h) of the Convention, the new anniversary date is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협약의 제1장 제14규칙 (h)항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_____ 입
 니다.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h) of the Convention, the new anniversary date is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증서번호 제 _____ 호
 Cert.no. _____



화 물 선 안 전 설 비 증 서

CARGO SHIP SAFETY EQUIPMENT CERTIFICATE

대 한 민 국
 REPUBLIC OF KOREA

이 증서에는 화물선안전설비기록부(양식 E)를 추가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This certificate shall be supplemented by a Record of Equipment for Cargo Ship Safety(Form E).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및 같은 협약에 관한 1988년 의정서에 따라 대한
 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as modified by
 the protocol of 1988 relating thereto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by

선 명 Name of Ship	선 박 번 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선 적 항 Port of Registry	총 톤 수 Gross Tonnage	재화중량톤수(미터톤)* Deadweight (metric tons)*	IMO 번호** IMO Number**

선박의 길이(제3장 제3규칙 12항)

Length of Ship(regulation III/3.12)

선박의 종류***

Type of Ship***

산적화물선

Bulk carrier

유조선

Oil tanker

케미컬 탱커

Chemical tanker

가스캐리어

Gas carrier

컨테이너운반선

Containership

그 밖의 화물선

Cargo ship other than any of the above

용골 거치일 또는 그와 동등한 건조 단계일, 또는 해당되는 경우 주요 특성의 개조나 변경 또는 수정
 작업의 시작일: _____

Date on which keel was laid or ship was at a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or, where applicable, date on
 which work for a conversion or an alteration or modification of a major character was commenced:

이 증서는 다음 사항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1. 이 선박은 협약의 제1장 제8규칙의 요건에 따라서 검사되었음.

That the ship has been survey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regulation I/8 of the
 Convention.

* 유조선, 케미컬 탱커 및 가스캐리어의 경우만 기재할 것

For oil tankers, chemical tankers and gas carriers only.

** IMO에서 Res. A.600(15)로 채택된 IMO 선박식별번호계획에 따를 것

In accordance with IMO ship identification number scheme adopted by the Organization by resolution A.600(15).

***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2면)

2. 이 선박의 검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That the survey showed that:

2.1 화재안전장치와 설비 및 화재제어도에 관하여 협약의 요건에 적합함:

the ship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s regards fire safety systems and appliances and fire control plans;

2.2 구명설비와 구명정, 구명뗏목, 구조정의 의장품을 협약의 요건에 따라 비치하고 있음:

the life-saving appliances and the equipment of lifeboats, liferafts and rescue boats were provid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2.3 구명줄 발사기를 협약의 요건에 따라 비치하고 있음:

the ship was provided with a line-throwing appliance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2.4 선박용 항해설비, 도선사용 승하선 장치 및 항해용 간행물이 협약의 요건에 적합함:

the ship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s regards shipborne navigational equipment, means of embarkation for pilots and nautical publications;

2.5 이 협약 및 현행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의 요건에 따라 음향신호와 조난신호의 수단, 등화 및 형상물을 비치하고 있음:

the ship was provided with lights, shapes, means of making sound signals and distress signals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nd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in force;

2.6 그 밖에 모든 점에서 이 선박은 협약의 관련요건에 적합함

in all other respects the ship complied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2.7 이 선박은 협약 제II-2장 제17규칙*/제III장 제38규칙*에 따른 대체설계 및 배치가 적용되었음*/적용되지 않았음*:

the ship was*/was not* subjected to an alternative design and arrangements in pursuance of regulation(s) II-2/17*/III/38* of the Convention;

2.8 방화*/구명*설비의 대체설계 및 배치에 관한 승인서류가 이 증서에 첨부되었음*/첨부되지 않았음*.

a Document of approval of alternative design and arrangements for fire protection*/life-saving appliances and arrangements* is*/is not* appended to this Certificate,

3. 이 선박은 협약 제III장 제26.1.1.1규칙**에 따라 항해구역을 _____로 제한하여 운항하고 있음

That the ship operates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II/26.1.1.1** within the limits of the trade area _____.

4. 면제증서가 발행되었음*/발행되지 않았음*

That an Exemption Certificate has*/has not* been issued.

*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 자체복원식 부분폐형구명정을 설치한 선박의 경우 1986년 7월 1일부터 1998년 7월 1일까지 사이에 건조된 선박에 적용되는 협약 1983 개정안(MSC.6(48))을 참고할 것

Refer to the 1983 amendments to SOLAS (MSC.6(48)), applicable to ships constructed on or after 1 July 1986, but before 1 July 1998 in the case of self-righting partially enclosed lifeboat(s) on board.

(3면)

이 증서는 협약의 제 1 장 제8규칙에 따라 연차검사 및 정기적 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____년 ____월 ____일***까지 유효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_____ day of _____ *** subject to the annual and periodical surveys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8 of the Convention.

이 증서 발급을 위한 검사완료일:

Completion date of the survey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

____년 ____월 ____일 _____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_____ on the _____ day of _____.

*** 협약 1/14(a)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만료일을 기재할 것. 이 만료일자는 규정 1/14(h)에 따라 수정되지 않는 한 협약의 규정 1/2(n)에 정의된 날짜에 해당한다.

Insert the date of expiry as specified by the Administration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14(a) of the Convention. The day and the month of this date correspond to the anniversary date as defined in regulation 1/2(n) of the Convention, unless amended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14(h).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글 및 영문)
선 급 법 인 명(한글 및 영문)

직인

(4면)

검 사 의 이 서
ENDORSEMENT FOR ANNUAL AND PERIODICAL SURVEYS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제 1 장 제8규칙에 따라 요구되는 검사결과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 survey required by regulation 1/8 of the Convention,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연 차 검 사

Annu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연차*/정기적* 검사

Annual*/Periodic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연차*/정기적* 검사

Annual*/Periodic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연 차 검 사

Annu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5면)

제I장 제14규칙 (h)(iii)항에 따른 연차검사/정기적 검사
Annual/periodical survey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h)(iii)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제I장 제14규칙 (h)(iii)항에 따른 연차+/정기적+검사의 결과 협약의 관련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n annual+/periodical+ survey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h)(iii) of the Convention,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제I장 제14규칙 (c)항이 적용되는 경우 증서의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일 때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certificate if valid for less
than 5 years where regulation I/14(c)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므로 협약의 제I장 제14규칙 (c)항에 따라
_____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nd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c)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정기검사 완료 후 제I장 제14규칙 (d)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이서
Endorsement where the renewal survey has been completed and regulation
I/14(d)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므로 협약의 제I장 제14규칙 (d)항에 따라
_____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nd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d)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6면)

제14조 제14규칙 (e)항 또는 (f)항이 적용되는 경우 검사예정항
 도착 시까지 또는 유예기간까지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validity of the certificate until reaching the port of
 survey or for a period of grace where regulation 1/14(e) or 1/14(f) applies

이 증서는 협약의 제14조 제14규칙 (e)항*/제14조 제14규칙 (f)항*에 따라서 _____까지 유효한 것
 으로 인정합니다.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14(e)*/1/14(f)*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제14조 제14규칙 (h)항이 적용되는 경우 연차일을 앞당기는 것에 대한 이서
 Endorsement for advancement of anniversary date where regulation 1/14(h)
 applies

협약의 제14조 제14규칙 (h)항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_____입니다.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14(h) of the Convention, the new anniversary date is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협약의 제14조 제14규칙 (h)항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_____입니다.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14(h) of the Convention, the new anniversary date is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7면)

화물선안전설비증서에 대한 설비기록부(양식 E)
RECORD OF EQUIPMENT FOR THE CARGO SHIP SAFETY EQUIPMENT CERTIFICATE(FORM E)

이 기록부는 화물선안전설비증서에 영구적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This Record shall be permanently attached to the Cargo Ship Safety Equipment Certificate.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및 개정서에 따른 설비의 기록부
RECORD OF EQUIPMENT FOR COMPLIANCE WITH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AS AMENDED

1. 선박의 세부사항

PARTICULARS OF SHIP _____

선 명

Name of ship _____

선 박 번 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_____

2. 구명설비의 상세

DETAILS OF LIFE-SAVING APPLIANCES

1. 구명설비가 제공되는 총인원

Total number of persons for which life-saving appliances are provided: _____

항목 Item	좌현 Port side	우현 Starb'd side	항목 Item	좌현 Port side	우현 Starb'd side
2. 대빛 진수식 구명정의 총수 Total number of davit launched lifeboats			3. 자유강하식 구명정의 총수 Total number of free-fall lifeboats		
2.1 구명정에 수용되는 인원 Total number of persons accommodated by them			3.1 구명정에 수용되는 인원 Total number of persons accommodated by them		
2.2 자체복원식 부분폐형 구명정의 수(제3장 제43규칙) Number of self-righting partially enclosed lifeboats (regulation III/43)			3.2 전폐형 구명정의 수(제3장 제31규칙 및 LSA Code 4.7) Number of totally enclosed lifeboats (regulation III/31 and LSA Code, section 4.7)		
2.3 전폐형의 구명정의 수(제3장 제31규칙 및 LSA Code 4.6) Number of totally enclosed lifeboats (regulation III/31 and LSA Code, section 4.6)			3.3 자장식 공기공급장치를 갖춘 구명정의 수(제3장 제31규칙 및 LSA Code 4.8) Number of lifeboats with a self-contained air support system (regulation III/31 and LSA Code, section 4.8)		
2.4 자장식 공기공급장치를 갖춘 구명정의 수(제3장 제31규칙 및 LSA Code 4.8) Number of lifeboats with a self-contained air support system (regulation III/31 and LSA Code, section 4.8)			3.4 내화형 구명정의 수(제3장 제31규칙 및 LSA Code 4.9) Number of fire-protected lifeboats (regulation III/31 and LSA Code, section 4.9)		
2.5 내화 구명정의 수(제3장 제31규칙 및 LSA Code 4.9) Number of fire-protected lifeboats (regulation III/31 and LSA Code, section 4.9)			4. 모터 구명정의 수 (위 2. 및 3.의 구명정 총수에 포함) Number of motor lifeboats (included in the total lifeboats shown in 2 and 3 above)		
			4.1 탐조등이 장치된 구명정의 수 Number of lifeboats fitted with searchlights		
2.6 그 밖의 구명정 Other lifeboats			5. 구조정의 수 Number of rescue boats		
2.6.1 구명정의 수 Number			5.1 위의 2. 및 3.의 구명정 총수에 포함되는 구조정의 수 Number of boats which are included in the total lifeboats shown in 2 and 3 above		
2.6.2 종류 Type					

* 자체복원식 부분폐형구명정을 설치한 선박의 경우 1986년 7월 1일부터 1998년 7월 1일까지 사이에 건조된 선박에 적용되는 협정 1983 개정안(MSC.6(48))을 참고할 것
Refer to the 1983 amendments to SOLAS (MSC.6(48)), applicable to ships constructed on or after 1 July 1986, but

2. 구명설비의 상세(계속)

DETAILS OF LIFE-SAVING APPLIANCES(Continued)

항목 Item	좌현 Port side	우현 Starb'd side	항목 Item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6. 구명뗏목 Liferafts			6.3 제3장 제31규칙 1.4항에 따라 요구되는 구명뗏목의 수 Number of liferafts required by regulation III/31.1.4	
6.1 승인된 진수장치가 필요한 것 Those for which approved launching appliances are required			7. 구명부환(救命浮環)의 수 Number of lifebuoys	
6.1.1 구명뗏목의 수 Number of liferafts			8. 구명조끼의 수 Number of lifejackets	
6.1.2 수용인원 Number of persons accommodated by them			9. 방수복의 수 Number of immersion suits	
6.2 승인된 진수장치가 필요 없는 것 Those for which approved launching appliances are not required			10. 노출보호복의 수 Number of anti-exposure suits	
6.2.1 구명뗏목의 수 Number of liferafts				
6.2.2 수용인원 Number of persons accommodated by them				

(9면)

3. 항해장비 및 설비의 상세

DETAILS OF NAVIGATIONAL SYSTEM AND EQUIPMENT

항목 Item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항목 Item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1.1 기준자기 컴퍼스* Standard magnetic compass*		2.4 전자 항해용간행물의 이중화 Back-up arrangement for electronic nautical publication	
1.2 예비의 자기 컴퍼스* Spare magnetic compass*		3.1 위성항법장치/지상파무선항해장치용 수신기/다중무선항해장치용 수신기*, ** Receiver for a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terrestrial radio navigation system/multi-system shipborne radionavigation receiver*, **	
1.3 자이로 컴퍼스* Gyro compass*		3.2 9GHz 항해용 레이더* 9GHz radar*	
1.4 자이로 컴퍼스 선수 리피터* Gyro compass heading repeater*		3.3 제2항해용 레이더(3 GHz/9 GHz**)* Second radar(3 GHz/9 GHz**)*	
1.5 자이로 컴퍼스 방위 리피터* Gyro compass bearing repeater*		3.4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 Automatic radar plotting aid(ARPA)*	
1.6 선수 또는 항적 제어장치* Heading or track control system*		3.5 자동추적장치* Automatic tracking aid*	
1.7 방위환 또는 컴퍼스 방위장치* Pelorus or compass bearing device*		3.6 제2 자동추적장치* Second automatic tracking aid*	
1.8 선수방위 수정 장치 Means of correcting heading and bearing		3.7 플로팅설비* Electronic plotting aid*	
1.9 선수방위 발신기* Transmitting heading device(THD)*		4.1 자동식별장치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AIS)	
2.1 해도/전자해도 표시 및 정보시스템 (ECDIS)** Nautical chart/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 (ECDIS)**		4.2 장거리 식별 및 추적장치 Long-range identification and tracking system	
2.2 ECDIS의 이중화 Back up arrangement for ECDIS		5.1 항해자료기록장치** Voyage data recorder(VDR)**	
2.3 항해용간행물 Nautical publication		5.2 간이항해자료기록장치** Simplified Voyage data recorder (S-VDR)**	

* 제5장 제19규칙에 따라 이 요건에 대한 대체설비는 허용된다. 그 밖의 설비의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Alternative means of meeting this requirement are permitted under regulation V/19. In case of other means they shall be specified.

**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10면)

3. 항해장비 및 설비의 상세(계속)

DETAIL OF NAVIGATIONAL SYSTEM AND EQUIPMENT(Continued)

항목 Item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항목 Item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6.1 선속거리계(대수속력)* Speed and distance measuring device(through the water)*		11. 주간신호등* Daylight signalling lamp*	
6.2 선속거리계(대지속력)* Speed and distance measuring device(over the ground in the forward and athwartship direction)*		12. 레이더 반사기* Radar reflector*	
7. 음향측심기* Echo sounding device*		13. 국제신호서 International code of signals	
8.1 타각지시기 등* Rudder, propeller, thrust, pitch and operational mode indicator*		14. 국제항공 및 해상수색구조매뉴얼 제3권 IAMSAR Manual, Volume III	
8.2 회두각 속도계* Rate-of-turn indicator*		15. 선교항해당직경보장치 Bridge navigational watch alarm system (BNWAS)	
9. 음향수신장치* Sound reception system*		16. 전자식 경사계 Electronic inclinometer	
10. 비상조타실의 전화* Telephone to emergency steering position*			

이 기록부는 모든 점에서 정확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is Record is correct in all respects.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_____ on the _____ day of _____.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글 및 영문)
선 급 법 인 명(한글 및 영문)

직인

* 제5장 제19규칙에 따라 이 요건에 대한 대체설비는 허용된다. 그 밖의 설비의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Alternative means of meeting this requirement are permitted under regulation V/19. In case of other means they shall be specified.

**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삭제할 것
Delete as appropriate.

증서번호 제 _____ 호
Cert. No. _____

화 물 선 안 전 증 서

CARGO SHIP SAFETY CERTIFICATE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이 증서에는 화물선 안전설비기록부(양식 C)를 추가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This certificate shall be supplemented by a Record of Equipment for Cargo Ship Safety (Form C).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및 같은 협약에 관한 1988년 의정서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as modified by the Protocol of 1988 relating thereto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by _____.

선 명 Name of Ship	선 박 번 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선 적 항 Port of Registry	총 톤 수 Gross Tonnage	선박의 재화중량톤수 Deadweight of ship (metric tons)*	IMO 번호 IMO Number**

선박의 길이(제3장 제3규칙 12항)

Length of Ship(regulation III/3.12)

선박의 운항구역(제4장 제2규칙)

Sea areas in which ship is certified to operate(regulation IV/2)***

선박의 종류

Type of Ship****

산적화물선
Bulk carrier

유조선
Oil tanker

케미컬 탱커
Chemical tanker

가스캐리어
Gas carrier

컨테이너운반선
Containership

그 밖의 화물선
Cargo ship other than any of the above

건조일:

Date of build:

- 건조 계약일
Date of building contract
 - 용골이 거치되거나 또는 그와 동등한 건조 단계에 달한 날
Date on which keel was laid or ship was at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 인도일
Date of delivery
 - 해당되는 경우, 주요 특성의 개조나 변경 또는 수정작업의 시작일
Date on which work for a conversion or an alteration or modification of a major character was commenced (where applicable)
- 적용 가능한 모든 일자를 기재할 것.
All applicable dates shall be completed.

이 증서는 다음 사항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1. 이 선박은 협약의 제1장 제8규칙, 제9규칙 및 제10규칙의 요건에 따라 검사되었음.

That the ship has been survey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regulation I/8, I/9, I/10 of the Convention.

* 유조선, 케미컬 탱커 및 가스캐리어의 경우만 기재할 것

For oil tankers, chemical tankers and gas carriers only.

** IMO에서 Res.A1117(30)으로 채택된 IMO 선박식별번호계획에 따를 것

In accordance with IMO ship identification number scheme adopted by the Organization by resolution A.1117(30).

*** A3 해역에서 운항할 수 있도록 인증된 선박의 경우, 인정된 이동식 위성서비스를 괄호 안에 표시할 것

For a ship certified to operate in sea area A3, indicate the recognized mobile satellite service in brackets.

****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2면)

2. 이 선박의 검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That the survey showed that:

2.1 협약의 제1장 제10규칙에 규정된 구조, 기관 및 설비의 상태를 충족하고, 협약의 제II-1장 및 제II-2장의 관련 요건에 적합함(화재안전장치와 설비 및 화재제어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the condition of the structure, machinery and equipment as defined in the regulation I/10 was satisfactory and the ship complied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chapter II-1 and chapter II-2 of the Convention(other than those relating to fire safety systems and appliances and fire-control plans.);

2.2 이 선박은 _____을(를) 연료로 사용함으로써 협약 제II-1장 G편의 요건을 갖추* /해당사항 없음*;
the ship complied with part G of chapter II-1 of the Convention using _____ as fuel* /N.A.*;

2.3 선저외판에 대한 최근 2회의 검사는 _____ 및 _____에 실시되었음;
the last two inspections of the outside of the ship's bottom took place on _____ and _____;

2.4 화재안전장치와 설비 및 화재제어도에 관하여 협약의 요건에 적합함;
the ship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s regards fire safety systems and appliances and fire-control plans;

2.5 구명설비와 구명정, 구명뗏목, 구조정의 의장품이 협약의 요건에 따라 비치되어 있음;
the life-saving appliances and the equipment of the lifeboats, liferafts and rescue boats were provid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2.6 구명출발사기를 협약의 요건에 따라 비치하고 있음;
the ship was provided with a line-throwing appliance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2.7 무선설비가 협약의 요건에 적합함;
the ship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s regards radio installations;

2.8 구명설비용 무선설비의 공급과 기능이 협약의 요건에 적합함;
the provision and functioning of the radio installations used in life-saving appliances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2.9 선박용 항해설비, 도선사용 승선장치 및 해사 간행물에 관하여 협약의 요건에 적합함;
the ship complied with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s regards shipborne navigational equipment, means of embarkation for pilots and nautical publications;

2.10 이 협약 및 현행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의 요건에 따라 음향신호와 조난신호의 수단, 등화 및 형상물을 비치하고 있음;
the ship was provided with lights, shapes, means of making sound signals and distress signals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nd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in force;

2.11 그 밖의 모든 점에서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함;
in all other respects, the ship complied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2.12 이 선박은 협약의 제II-1장 제55규칙* / 제II-2장 제17규칙* / 제III장 제38규칙*에 따라 대체 설계 및 배치가 적용되었음*/적용되지 않았음*;
the ship was*/was not* subjected to an alternative design and arrangements in pursuance of regulation(s) II-1/55* / II-2/17* / III/38* of the Convention;

2.13 기관 및 전기설비*/방화*/구명*설비에 관한 대체설계 및 배치승인에 관한 서류가 이 증서에 첨부되었음*/첨부되지 않았음*
a Documents of approval of alternative design and arrangements for machinery and electrical installations*/fire protection*/life-saving appliances and arrangements* is*/is not* appended to this Certificate.

*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3면)

3. 이 선박은 협약 제3장 제26.1.1.1규칙*에 따라 항해구역을 _____로 제한하여 운항하고 있음
That the ship operates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II/26.1.1.1* within the limits of the trade area _____.

4. 면제증서가 발행되었음/발행되지 않았음**
That an Exemption Certificate has/has not** been issued.

이 증서는 이 협약의 제1장 제8규칙, 제9규칙 및 제10규칙에 따라 연차검사, 중간검사, 정기적 검사 및 선저외판의 검사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 유효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_____*** subject to the annual, intermediate and periodical surveys and inspections of the outside of the ship's bottom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s I/8, I/9 and I/10 of the Convention.

이 증서 발급을 위한 검사완료일: _____

Completion date of the survey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 _____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_____ on the _____ day of _____.

해양수산부장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글 및 영문)
선 급 법 인 명(한글 및 영문)

직인

* 자체복원식 부분폐형구명정을 설치한 선박의 경우 1986년 7월 1일부터 1998년 7월 1일까지 사이에 건조된 선박에 적용되는 협약 1983 개정안(MSC.6(48))을 참고할 것
Refer to the 1983 amendments to SOLAS (MSC.6(48)), applicable to ships constructed on or after 1 July 1986, but before 1 July 1998 in the case of self-righting partially enclosed lifeboat(s) on board.

**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 이 협약의 제1장 제14규칙 (a)항에 따라 주관청이 지정한 만료일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만료일은 이 협약 제1장 제14(h)규칙에 따라 개정되지 않는 한 이 협약 제1장 제2규칙 (n)항에 정의된 연차일을 말합니다.
Insert the dated of expiry as specified by the Administration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a) of the Convention. The day and month of this date correspond to the anniversary date as defined in regulation I/2(n) of the Convention, unless amended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h)

(4면)

이 증서의 2.1에 규정된 구조, 기관 및 설비에 관한 연차 및 중간검사의 이서
 Endorsement for annual and intermediate surveys relating to structure, machinery and equipment
 referred to in paragraphs 2.1 of this certificate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제1장 제10규칙에 따른 검사결과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 survey required by regulation 1/10 of the Convention,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연차검사

Annual Survey: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연차*/중간* 검사

Annual*/Intermediate* Survey: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연차*/중간* 검사

Annual*/Intermediate* Survey: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연차검사

Annual Survey: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제1장 제14규칙 (h)(iii)항에 따른 연차검사/중간검사

Annual/Intermediate survey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14(h)(iii)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제1장 제10규칙 및 제1장 제14규칙 (h)(iii)항에 따른 연차*/중간검사* 결과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n annual*/intermediate* survey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10 and
 1/14(h)(iii) of the Convention,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5면)

선저외판의 검사에 대한 이서*
 Endorsement for Inspection of the outside of ship's bottom*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제1장 제10규칙에 의하여 요구되는 검사결과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n inspection required by regulation 1/10 of the Convention,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제1차 검사
First inspection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제2차 검사
Second inspection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구명설비 및 이 증서의 2.3, 2.4, 2.5, 2.8 및 2.9에 규정된 다른 설비에 관한 연차 및 정기
 적 검사의 이서

Endorsement for annual and periodical surveys relation to life-saving appliance and other
 equipment referred to in paragraphs 2.3, 2.4, 2.5, 2.8 and 2.9 of this certificate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제1장 제8규칙에 의하여 요구되는 검사결과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 survey required by regulation 1/8 of the Convention,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연차검사
Annual Survey: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연차**/정기적**검사
Annual**/Periodical** Survey: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연차**/정기적**검사
Annual**/Periodical** Survey: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연차검사
Annual Survey: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 추가 검사를 위하여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Provision may be made for additional inspections.

**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6면)

제1장 제14규칙 (h)(iii)항에 따른 연차검사/정기적 검사
Annual/Periodical surveys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14(h)(iii)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제1장 제8규칙 및 제1장 제14규칙 (h)(iii)항에 따른 연차검사/정기적 검사*의 결과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n annual*/periodical* survey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s 1/8 and 1/14(h)(iii) of the Convention,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이 증서의 2.6 및 2.7항에 명확하게 적힌 무선설비에 관한 정기적 검사의 이서
Endorsement for periodical surveys relation to radio installa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s 2.6 and 2.7 of this certificate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제1장 제9규칙에 따른 검사 결과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 survey required by regulation 1/9 of the Convention,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정기적 검사
Periodical Survey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정기적 검사
Periodical Survey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정기적 검사
Periodical Survey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정기적 검사
Periodical Survey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제1장 제14규칙 (h)(iii)항에 따른 정기적 검사
Periodical survey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14(h)(iii)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제1장 제9규칙 및 제1장 제14규칙 (h)(iii)항에 따른 검사 결과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 survey required by regulation 1/9 and 1/14(h)(iii) of the Convention,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7면)

제1장 제14규칙 (c)항이 적용되는 경우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일 때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certificate if valid for less than 5 years where Regulation 1/14(c)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므로 협약의 제1장 제14규칙 (c)항에 따라 _____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nd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14(d)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정기검사 완료 후 제1장 제14규칙 (d)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이서

Endorsement where the renewal survey has been completed and Regulation 1/14(d)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므로 협약의 제1장 제14규칙 (d)항에 따라 _____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nd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14(d)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제1장 제14규칙 (e)항 또는 (f)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검사예정항 도착 시까지 또는 유예기간까지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validity of the certificate until reaching the port of survey or for a period of grace where Regulation 1/14(e) or 1/14(f) applies

이 증서는 협약의 제1장 제14규칙 (e)항·/(f)·항에 따라 _____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e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14(e)·/1/14(f)·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제1장 제14규칙 (h)항이 적용되는 경우 연차일을 앞당기는 것에 대한 이서
Endorsement for advancement of anniversary date where regulation 1/14(h) applies

협약의 제1장 제14규칙 (h)항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_____ 입니다.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14(h) of the Convention, the new anniversary date is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협약의 제1장 제14규칙 (h)항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_____ 입니다.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14(h) of the Convention, the new anniversary date is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 해당되지 않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화물선안전증서에 대한 설비기록부(양식 C)
RECORD OF EQUIPMENT FOR THE CARGO SHIP SAFETY CERTIFICATE(FORM C)

이 기록부는 화물선안전증서에 영구적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This Record shall be permanently attached to the Cargo Ship Safety Equipment Certificate.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및 개정서에 따른 설비의 기록부
RECORD OF EQUIPMENT FOR COMPLIANCE WITH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as amended

1. 선박의 세부사항
PARTICULARS OF SHIP

선명
Name of ship _____

선박번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_____

무선설비 조작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최소인원
Minimum number of persons with required qualifications to operate the radio installations _____

2. 구명설비의 상세
DETAILS OF LIFE-SAVING APPLIANCES

1. 구명설비가 제공되는 총인원: Total number of persons for which life-saving appliances are provided : _____					
항목 Item	좌현 Port side	우현 Starb'd side	항목 Item	좌현 Port side	우현 Starb'd side
2. 대빛 진수식 구명정 총수 Total number of davit launched lifeboats			3. 자유강하식 구명정의 총수 Total number of free fall lifeboats		
2.1 구명정에 수용되는 총인원 Total number of persons accommodated by them			3.1 구명정에 수용되는 총인원 Total number of persons accommodated by them		
2.2 자체복원식 부분폐형 구명정의 수(제3장 제43규칙*) Number of self-righting partially enclosed lifeboats (regulation III/43*)			3.2 전폐형 구명정의 수(제3장 제31규칙 및 LSA Code 4.7) Number of totally enclosed lifeboats (regulation III/31 and LSA Code, section 4.7)		
2.3 전폐형의 구명정의 수 (제3장 제31규칙 및 LSA Code 4.6) Number of totally enclosed lifeboats (regulation III/31 and LSA Code, section 4.6)			3.3 자장식 공기공급장치 부착형 구명정의 수(제3장 제31규칙 및 LSA Code 4.8) Number of lifeboats with a Self-contained air support system (regulation III/31 and LSA Code, section 4.8)		
			3.4 내화형 구명정의 수(제3장 제31규칙 및 LSA Code 4.9) Number of Fire-protected lifeboats (regulation III/31 and LSA Code, section 4.9)		
2.4 자장식 공기공급장치를 갖춘 구명정의 수(제3장 제31규칙 및 LSA Code 4.8) Number of lifeboats with a self-contained air support system (regulation III/31 and LSA Code, section 4.8)			4. 모터 구명정의 수 (위 2. 및 3.의 구명정 총수에 포함) Number of motor lifeboats (included in the total lifeboats shown in 2 and 3 above)		
2.5 내화 구명정의 수 (제3장 제31규칙 및 LSA Code 4.9) Number of fire-protected lifeboats (regulation III/31 and LSA Code, section 4.9)			4.1 탐조등이 장치된 구명정의 수 Number of lifeboats fitted with searchlights		
			5. 구조정의 수 Number of rescue boats		
2.6 그 밖의 구명정 Other lifeboats			5.1 위 2. 및 3.의 구명정 총수에 포함되는 구조정의 수 Number of boats which are included in the total lifeboats shown in 2 and 3 above		
2.6.1 구명정의 수 Number					
2.6.2 종류 Type					

(9면)

2. 구명설비의 상세(계속)

DETAILS OF LIFE-SAVING APPLIANCES(Continued)

항목 Item	좌현 Port side	우현 Starb'd side	항목 Item	실제 조치 Actual provision
6. 구명뗏목 Liferafts			6.3 제3장 제31규칙 1.4항에 따라 요구되는 구명뗏목의 수 Number of liferafts required by regulation III/31.1.4	
6.1 승인된 진수장치가 필요한 것 Those for which approved launching appliances are required			7. 구명부환(救命浮環)의 수 Number of lifebuoys	
6.1.1 구명뗏목의 수 Number of liferafts			8. 구명조끼의 수 Number of lifejackets	
6.1.2 수용인원 Number of persons accommodated by them			9. 방수복의 수 Number of immersion suits	
6.2 승인된 진수장치가 필요 없는 것 Those for which approved launching appliances are not required			10. 노출보호복의 수 Number of anti-exposure suits	
6.2.1 구명뗏목의 수 Number of liferafts				
6.2.2 수용인원 Number of persons accommodated by them				

3. 무선설비의 상세

DETAIL OF RADIO FACILITIES

항목 Item	실제 조치 Actual provision	항목 Item	실제 조치 Actual provision
1. 기본장치 Primary systems		3. 해상안전정보 및 수색구조 관련 정보 수신을 위한 설비 Facilities for reception of MSI and search and rescue related information	
1.1 VHF 무선설비 VHF radio installation		4.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 Emergency Position Indication Radio Beacon(EPIRB)	
1.1.1 DSC 인코더 DSC encoder		5. 양방향 VHF 무선전화장비 Two-way VHF radiotelephone apparatus	
1.1.2 DSC 수신기 DSC watch receiver		5.1 휴대용 양방향 VHF 무선전화장비 Portable two-way VHF radiotelephone apparatus	
1.1.3 무선전화 Radiotelephony		5.2 생존정에 장착된 양방향 VHF 무선전화장비 Two-way VHF radiotelephone apparatus fitted in survival craft	
1.2 MF 무선설비 MF radio installation		6. 수색 및 구조 위치확인장치 Search and rescue locating devices	
1.2.1 DSC 인코더 DSC encoder		6.1 생존정에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비치된 레이더 수색 및 구조 트랜스폰더 Radar search and rescue transponders (radar SART) stowed for rapid placement in survival craft	
1.2.2 DSC 수신기 DSC watch receiver		6.2 생존정에 비치된 레이더 수색 및 구조 트랜스폰더 Radar search and rescue transponders (radar SART) stowed in survival craft	
1.2.3 무선전화 Radiotelephony		6.3 생존정에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비치된 AIS 수색 및 구조 송신기 AIS search and rescue transmitters (AIS-SART) stowed for rapid placement in survival craft	
1.3 MF/HF 무선설비 MF/HF radio installation		6.4 생존정에 비치된 AIS 수색 및 구조 송신기 AIS search and rescue transmitter (AIS-SART) stowed in survival craft	
1.3.1 DSC 인코더 DSC encoder			
1.3.2 DSC 수신기 DSC watch receiver			
1.3.3 무선전화 Radiotelephony			
1.4 인정된 이동식 위성 서비스 선박지구국 Recognized mobile satellite service ship earth station			
2. 선박-해안 조난 경보 전송을 개시하는 제2차 경보장치 Secondary means of initiating the transmission of ship-to-shore distress			

(10면)

4. 무선설비의 이용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법(제4장 제15규칙 6항 및 7항)
Methods used to ensure availability of radio facilities(Regulation IV/15.6 and 15.7)

4.1 설비의 이중화

Duplication of equipment _____

4.2 육상정비

Shore-based maintenance _____

4.3 선상정비능력

At-sea maintenance capability _____

5. 항해장비 및 설비의 상세

DETAILS OF NAVIGATIONAL SYSTEM AND EQUIPMENT

항목 Item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항목 Item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1.1 기준자기 컴퍼스** Standard magnetic compass**		3.7 플로팅설비** Electronic plotting aid**	
1.2 예비의 자기컴퍼스** Spare magnetic compass**		4.1 자동식별장치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AIS)	
1.3 자이로 컴퍼스** Gyro compass**		4.2 장거리 식별 및 추적장치 Long-range identification and tracking system	
1.4 자이로 컴퍼스 선수 리피터** Gyro compass heading repeater**		5.1 항해자료기록장치*** Voyage data recorder(VDR)***	
1.5 자이로 컴퍼스 방위 리피터** Gyro compass bearing repeater**		5.2 간이항해자료기록장치*** (S-VDR)***	
1.6 선수 또는 항적제어장치** Heading or track control system**		6.1 선속거리계(대수속력)*** Speed and distance measuring device(through the water)***	
1.7 방위환 또는 컴퍼스 방위장치** Pelorus or compass bearing device**		6.2 선속거리계(대지속력)*** Speed and distance measuring device(over the ground in the forward and athwartship direction)***	
1.8 선수방위 수정장치 Means of correcting heading and bearing		7. 음향측심기*** Echo sounding device***	
1.9 선수방위 발신기** Transmitting heading device(THD)**		8.1 타각지시기 등**, *** Rudder, propeller, thrust, pitch and operational mode indicator**, ***	
2.1 해도/전자해도 표시 및 정보시스템*** Nautical chart/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 (ECDIS)***		8.2 회두각 속도계 Rate of turn indicator	
2.2 ECDIS의 이중화 Back up arrangement for ECDIS		9. 음향수신장치*** Sound reception system***	
2.3 항해용간행물 Nautical publications		10. 비상조타실의 전화*** Telephone to emergency steering position***	
2.4 전자 항해용간행물의 이중화 Back up arrangement for electronic nautical publications		11. 주간신호등*** Daylight signalling lamp***	
3.1 위성항법장치/지상파무선항법장치용 수신기/다중무선항법장치용 수신기**, *** Receiver for a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terrestrial radio navigation system/multi-system shipborne radionavigation receiver**, ***		12. 레이더 반사기*** Radar reflector***	
3.2 9 GHz 레이더** 9 GHz radar**		13. 국제신호서 International code of signals	
3.3 제2 항해용 레이더(3 GHz/9 GHz)** Second radar(3 GHz/9 GHz)**		14. 국제항공 및 해상수색구조매뉴얼 제3권 IAMSAR Manual, Volume III	
3.4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 Automatic radar plotting aid (ARPA)**		15. 선교항해당직경보장치 Bridge navigational watch alarm system (BNWAS)	
3.5 자동추적장치** Automatic tracking aid**		16. 전자식 경사계 Electronic inclinometer	
3.6 제2 자동추적장치** Second automatic tracking aid**			

(11면)

이 기록부는 모든 점에서 정확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is Record is correct in all respects.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_____ 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_____ on the _____ day of _____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글 및 영문)
선 급 법 인 명(한글 및 영문)

직인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6. 8. 25.>

(1면)

증서번호 제 _____ 호
Cert. No. _____

원 자 력 화 물 선 안 전 증 서

NUCLEAR CARGO SHIP SAFETY CERTIFICATE

대 한 민 국
REPUBLIC OF KOREA

이 증서에는 화물선 안전설비기록부(양식 C)를 추가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This certificate shall be supplemented by a Record of Equipment for Cargo Ship Safety (Form C).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as amend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by _____.

선 명 Name of Ship	선 박 번 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선 적 항 Port of Registry	총 톤 수 Gross Tonnage	선박의 재화중량톤수 Deadweight of ship (metric tons)*	IMO 번호 IMO Number**

선박의 길이(제3장 제3규칙 12항)

Length of Ship(regulation III/3,12)

선박의 운항구역(제4장 제2규칙)

Sea areas in which ship is certified to operate(regulation IV/2)***

선박의 종류

Type of Ship****

산적화물선

Bulk carrier

유조선

Oil tanker

케미컬 탱커

Chemical tanker

가스캐리어

Gas carrier

컨테이너운반선

Containership

그 밖의 화물선

Cargo ship other than any of the above

건조일:

Date of build:

- 건조 계약일

Date of building contract

- 용골이 거치되거나 또는 그와 동등한 건조 단계에 달한 날

Date on which keel was laid or ship was at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 인도일

Date of delivery

- 해당되는 경우, 주요 특성의 개조나 변경 또는 수정작업의 시작일

Date on which work for a conversion or an alteration or modification of a major character was commenced (where applicable)

적용 가능한 모든 일자를 기재할 것.

All applicable dates shall be completed.

이 증서는 다음 사항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1. 이 선박은 협약의 제8장 제9규칙의 요건에 따라 검사되었음.

That the ship has been survey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regulation VIII/9 of the Convention.

* 유조선, 케미컬 탱커 및 가스캐리어의 경우만 기재할 것

For oil tankers, chemical tankers and gas carriers only.

** IMO에서 Res.A1117(30)으로 채택된 IMO 선박식별번호계획에 따를 것

In accordance with IMO ship identification number scheme adopted by the Organization by resolution A.1117(30).

*** A3 해역에서 운항할 수 있도록 인증된 선박의 경우, 인정된 이동식 위성서비스를 괄호 안에 표시할 것

For a ship certified to operate in sea area A3, indicate the recognized mobile satellite service in brackets.

****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2면)

2. 이 원자력선박은 협약 제8장의 모든 요건을 갖추었고, 해당 선박의 안전도평가 결과와 일치함
That the ship, being a nuclear ship, complied with all the requirements of chapter VIII of the Convention and conformed to the Safety Assessment approved for the ship; and that:
- 2.1 협약의 제1장 제10규칙에 규정된 구조, 기관 및 설비의 상태를 충족하고, 협약의 제II-1장 및 제II-2장의 관련 요건에 적합함(화재안전장치와 설비 및 화재제어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the condition of the structure, machinery and equipment as defined in the regulation I/10 was satisfactory and the ship complied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chapter II-1 and chapter II-2 of the Convention(other than those relating to fire safety systems and appliances and fire-control plans.);
- 2.2 화재안전장치와 설비 및 화재제어도에 관하여 협약의 요건에 적합함;
the ship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s regards fire safety systems and appliances and fire-control plans;
- 2.3 구명설비와 구명정, 구명뗏목, 구조정의 의장품이 협약의 요건에 따라 비치되어 있음;
the life-saving appliances and the equipment of the lifeboats, liferafts and rescue boats were provid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 2.4 구명출발사기를 협약의 요건에 따라 비치하고 있음;
the ship was provided with a line-throwing appliance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 2.5 무선설비가 협약의 요건에 적합함;
the ship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s regards radio installations;
- 2.6 구명설비용 무선설비의 공급과 기능이 협약의 요건에 적합함;
the provision and functioning of the radio installations used in life-saving appliances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 2.7 선박용 항해설비, 도선사용 승선장치 및 해사 간행물에 관하여 협약의 요건에 적합함;
the ship complied with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s regards shipborne navigational equipment, means of embarkation for pilots and nautical publications;
- 2.8 이 협약 및 현행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의 요건에 따라 음향신호와 조난신호의 수단, 등화 및 형상물을 비치하고 있음;
the ship was provided with lights, shapes, means of making sound signals and distress signals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nd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in force;
- 2.9 그 밖의 모든 점에서 이 선박은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함;
in all other respects, the ship complied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 2.10 이 선박은 협약의 제II-1장 제55규칙* / 제II-2장 제17규칙* / 제III장 제38규칙*에 따라 대체 설계 및 배치가 적용되었음*/적용되지 않았음*;
the ship was*/was not* subjected to an alternative design and arrangements in pursuance of regulation(s) II-1/55* / II-2/17* / III/38* of the Convention;
- 2.11 기관 및 전기설비*/방화*/구명*설비에 관한 대체설계 및 배치승인에 관한 서류가 이 증서에 첨부되었음*/첨부되지 않았음*
a Documents of approval of alternative design and arrangements for machinery and electrical installations*/fire protection*/life-saving appliances and arrangements* is*/is not* appended to this Certificate.

*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3면)

이 증서 발급을 위한 검사완료일: _____

Completion date of the survey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 _____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_____ on the _____ day of _____.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글 및 영문)
선 급 법 인 명(한글 및 영문)

직인

(4면)

화물선안전증서에 대한 설비기록부(양식 C)
RECORD OF EQUIPMENT FOR THE CARGO SHIP SAFETY CERTIFICATE(FORM C)

이 기록부는 화물선안전증서에 영구적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This Record shall be permanently attached to the Cargo Ship Safety Equipment Certificate.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및 개정서에 따른 설비의 기록부

RECORD OF EQUIPMENT FOR COMPLIANCE WITH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as amended

1. 선박의 세부사항

PARTICULARS OF SHIP

선명

Name of ship _____

선박번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_____

무선설비 조작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최소인원

Minimum number of persons with required qualifications to operate the radio installations _____

2. 구명설비의 상세

DETAILS OF LIFE-SAVING APPLIANCES

1. 구명설비가 제공되는 총인원: Total number of persons for which life-saving appliances are provided : _____					
항목 Item	좌현 Port side	우현 Starb'd side	항목 Item	좌현 Port side	우현 Starb'd side
2. 대빛 진수식 구명정 총수 Total number of davit launched lifeboats			3. 자유강하식 구명정의 총수 Total number of free fall lifeboats		
2.1 구명정에 수용되는 인원 Total number of persons accommodated by them			3.1 구명정에 수용되는 인원 Total number of persons accommodated by them		
2.2 자체복원식 부분폐형 구명정의 수(제3장 제43규칙*) Number of self-righting partially enclosed lifeboats (regulation III/43*)			3.2 전폐형 구명정의 수(제3장 제31규칙 및 LSA Code 4.7) Number of totally enclosed lifeboats (regulation III/31 and LSA Code, section 4.7)		
2.3 전폐형의 구명정의 수 (제3장 제31규칙 및 LSA Code 4.6) Number of totally enclosed lifeboats (regulation III/31 and LSA Code, section 4.6)			3.3 자장식 공기공급장치 부착형 구명정의 수(제3장 제31규칙 및 LSA Code 4.8) Number of lifeboats with a Self-contained air support system (regulation III/31 and LSA Code, section 4.8)		
			3.4 내화형 구명정의 수(제3장 제31규칙 및 LSA Code 4.9) Number of Fire-protected lifeboats (regulation III/31 and LSA Code, section 4.9)		
2.4 자장식 공기공급장치를 갖춘 구명정의 수(제3장 제31규칙 및 LSA Code 4.8) Number of lifeboats with a self-contained air support system (regulation III/31 and LSA Code, section 4.8)			4. 모터 구명정의 수 (위 2. 및 3.의 구명정 총수에 포함) Number of motor lifeboats (included in the total lifeboats shown in 2 and 3 above)		
2.5 내화 구명정의 수 (제3장 제31규칙 및 LSA Code 4.9) Number of fire-protected lifeboats (regulation III/31 and LSA Code, section 4.9)			4.1 탐조등이 장치된 구명정의 수 Number of lifeboats fitted with searchlights		
			5. 구조정의 수 Number of rescue boats		
2.6 그 밖의 구명정 Other lifeboats			5.1 위 2. 및 3.의 구명정 총수에 포함되는 구조정의 수 Number of boats which are included in the total lifeboats shown in 2 and 3 above		
2.6.1 구명정의 수 Number					
2.6.2 종류 Type					

* 자체복원식 부분폐형구명정을 설치한 선박의 경우 1986년 7월 1일부터 1998년 7월 1일까지 사이에 건조된 선박에 적용되는 협약 1983 개정안(MSC.6(48))을 참고할 것

Refer to the 1983 amendments to SOLAS (MSC.6(48)), applicable to ships constructed on or after 1 July 1986, but before 1 July 1998 in the case of self-righting partially enclosed lifeboats on board.

(5면)

2. 구명설비의 상세(계속)
DETAILS OF LIFE-SAVING APPLIANCES(Continued)

항목 Item	좌현 Port side	우현 Starb'd side	항목 Item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6. 구명뗏목 Liferafts			6.3 제III장 제31규칙 1.4항에 의 하여 요구되는 구명뗏목의 수 Number of liferafts required by regulation III/31.1.4	
6.1 승인된 진수장치가 필요한 것 Those for which approved launching appliances are required			7. 구명부환(救命浮環)의 수 Number of lifebuoys	
6.1.1 구명뗏목의 수 Number of liferafts			8. 구명조끼의 수 Number of life jackets	
6.1.2 수용인원 Number of persons accommodated by them			9. 방수복의 수 Number of immersion suits	
6.2 승인된 진수장치가 필요 없는 것 Those for which approved launching appliances are not required			10. 노출보호복의 수 Number of anti-exposure suits	
6.2.1 구명뗏목의 수 Number of liferafts				
6.2.2 수용인원 Number of persons accommodated by them				

3. 무선설비의 상세
DETAIL OF RADIO FACILITIES

항목 Item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항목 Item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1. 기본장치 Primary systems		3. 해사안전정보 및 수색구조 관련 정보 수신을 위한 설비 Facilities for reception of MSI and search and rescue related information	
1.1 VHF 무선설비 VHF radio installation		4.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 Emergency Position Indication Radio Beacon(EPIRB)	
1.1.1 DSC 인코더 DSC encoder		5. 양방향 VHF 무선전화 장치 Two-way VHF radiotelephone apparatus	
1.1.2 DSC 수신기 DSC watch receiver		5.1 휴대용 양방향 VHF 무선전화장비 Portable two-way VHF radiotelephone apparatus	
1.1.3 무선전화 Radiotelephony		5.2 생존정에 장착된 양방향 VHF 무선전화 장치 Two-way VHF radiotelephone apparatus fitted in survival craft	
1.2 MF 무선설비 MF radio installation		6. 수색 및 구조 위치확인장치 Search and rescue locating devices	
1.2.1 DSC 인코더 DSC encoder		6.1 생존정에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비치된 레이더 수색 및 구조 트랜스폰더 Radar search and rescue transponders (radar SART) stowed for rapid placement in survival craft	
1.2.2 DSC 수신기 DSC watch receiver		6.2 생존정에 비치된 레이더 수색 및 구조 트랜스폰더 Radar search and rescue transponders (radar SART) stowed in survival craft	
1.2.3 무선전화 Radiotelephony		6.3 생존정에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비치된 AIS 수색 및 구조 송신기 AIS search and rescue transmitters (AIS-SART) stowed for rapid placement in survival craft	
1.3 MF/HF 무선설비 MF/HF radio installation		6.4 생존정에 비치된 AIS 수색 및 구조 송신기 AIS search and rescue transmitter (AIS-SART) stowed in survival craft	
1.3.1 DSC 인코더 DSC encoder			
1.3.2 DSC 수신기 DSC watch receiver			
1.3.3 무선전화 Radiotelephony			
1.4 인정된 이동식 위성 서비스 선박지구국 Recognized mobile satellite service ship earth station			
2. 선박-해안 조난 경보 전송을 개시하는 제2 차 경보장치 Secondary means of initiating the transmission of ship-to-shore distress alerts			

(6면)

4. 무선설비의 이용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법(제4장 제15규칙 6항 및 7항)
Methods used to ensure availability of radio facilities(Regulation IV/15.6 and 15.7)

- 4.1 설비의 이중화
Duplication of equipment _____
- 4.2 육상정비
Shore-based maintenance _____
- 4.3 선상정비능력
At-sea maintenance capability _____

5. 항해장비 및 설비의 상세
DETAILS OF NAVIGATIONAL SYSTEM AND EQUIPMENT

항목 Item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항목 Item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1.1 기준 자기 컴퍼스* Standard magnetic compass*		3.7 플로팅설비* Electronic plotting aid*	
1.2 예비의 자기 컴퍼스* Spare magnetic compass**		4.1 자동식별장치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AIS)	
1.3 자이로 컴퍼스* Gyro compass*		4.2 장거리 식별 및 추적장치 Long-range identification and tracking system	
1.4 자이로 컴퍼스 선수 리피터* Gyro compass heading repeater*		5.1 항해자료기록장치** Voyage data recorder(VDR)**	
1.5 자이로 컴퍼스 방위 리피터* Gyro compass bearing repeater*		5.2 간이항해자료기록장치** Simplified Voyage data recorder (S-VDR)**	
1.6 선수 또는 항적 제어장치* Heading or track control system*		6.1 선속거리계(대수속력)* Speed and distance measuring device(through the water)*	
1.7 방위환 또는 컴퍼스 방위장치* Pelorus or compass bearing device*		6.2 선속거리계(대지속력)* Speed and distance measuring device(over the ground in the forward and athwartship direction)*	
1.8 선수방위 수정장치 Means of correcting heading and bearing		7. 음향측심기* Echo sounding device*	
1.9 선수방위 발신기* Transmitting heading device(THD)*		8.1 타각지시기 등*** Rudder, propeller, thrust, pitch and operational mode indicator***	
2.1 해도/전자해도 표시 및 정보시스템** Nautical chart/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 (ECDIS)**		8.2 회두각 속도계* Rate of turn indicator*	
2.2 ECDIS의 이중화 Back up arrangement for ECDIS		9. 음향수신장치* Sound reception system*	
2.3 항해용간행물 Nautical publications		10. 비상조타실의 전화* Telephone to emergency steering position	
2.4 전자 항해용간행물의 이중화 Back up arrangement for electronic nautical publications		11. 주간신호등* Daylight signalling lamp*	
3.1 위성항법장치/지상파무선항법장치용 수신기/다중무선항법장치용 수신기** Receiver for a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terrestrial radio navigation system/multi-system shipborne radionavigation receiver**		12. 레이더 반사기* Radar reflector*	
3.2 9 GHz 레이더* 9 GHz radar*		13. 국제신호서 International code of signals	
3.3 제2 항해용 레이더(3 GHz/9 GHz)** Second radar(3 GHz/9 GHz)**		14. 국제항공 및 해상수색구조매뉴얼 제3권 IAMSAR Manual, Volume III	
3.4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 Automatic radar plotting aid (ARPA)*		15. 선교항해당직경보장치 Bridge navigational watch alarm system (BNWAS)	
3.5 자동추적장치* Automatic tracking aid*		16. 전자식 경사계 Electronic inclinometer	
3.6 제2 자동추적장치* Second automatic tracking aid*			

(7면)

이 기록부는 모든 점에서 정확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is Record is correct in all respects.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_____ 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_____ on the _____ day of _____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글 및 영문)
선 급 법 인 명(한글 및 영문)

직인

[별지 제16호 서식] <개정 2021. 6. 30.>

(1면)

증서번호 제 _____ 호
Cert. No. _____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
INTERNATIONAL CERTIFICATE OF FITNESS FOR THE CARRIAGE
OF LIQUEFIED GASES IN BULK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코드」 [해사안전위원회 결의 370(93)에 의해 개정된 해사안전위원회 결의 5(48)]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_____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de for the Construction and Equipment of Ships Carrying Liquefied Gases in Bulk(resolution MSC.5(48)) as amended by resolution MSC.370(93))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y _____.

선명 Name of Ship	선박번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선적항 Port of Registry	화물용적 Cargo Capacity(m ³)	선형 Ship Type	IMO 번호 IMO Number

용골을 거치한 날짜, 이와 동등한 건조단계에 도달한 날짜 또는 액화가스산적운송선으로의 개조가 시작된 날짜(개조선인 경우):

Date on which keel was laid or ship was at a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or, (in the case of a converted ship) date on which conversion to a gas carrier was commenced: _____, _____

이 선박은 코드의 모든 개정사항을 준수함:

The ship also complies fully with the following amendments to the Code:

That the following design criteria have been used:

ambient air temperature _____ °C

ambient water temperature _____ °C

.3

탱크 형식 및 번호 Tank type and number	응력 계수 Stress factors				재료 Materials	안전밸브의 최대 허용 설정 압력 MARVS
	A	B	C	D		
화물관 Cargo piping						

Note : Tank numbers referred to in this list are identified on the attachment 2, signed and dated tank plan.

4. 화물 탱크 재료의 기계적 성질은 $^{\circ}\text{C}$ 에서 결정되었을.

법제처 428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cargo tank material were determined at _____ 국가법령정보센터

(3면)

4. 이 선박은 코드의 모든 관련 운영 규정이 준수될 것을 조건으로 다음 화물의 산적 운송에 적합함:
That the ship is suitable for the carriage in bulk of the following products, provided that all relevant operational provisions of the Code are observed.

화 물 Products	운 송 조 건 [†] Conditions of carriage [†]				
	탱크번호 Tank Numbers	최저온도 Minimum Temperature (°C)	최대압력 Maximum Pressure (kg/m ²)	최대밀도 Maximum Density	탱크 적하 조건 Tank Loading Condition
법제처				430	

(4면)

5. 코드 1.3*/2.6.2*에 따라 이 코드의 규정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 선박에 대해 수정됨:

That, in accordance with 1.3*/2.6.2*, the provisions of the Code are modified in respect of the ship in the following manner:

6.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자료가 코드 2.2.5에 따라 본선에 제공되고 있음.

That the loading and stability information booklet required by paragraph 2.2.5 of the Code has been supplied to the ship in an approved form.

7. 이 선박은 다음과 같이 적하되어야 함:

That the ship must be loaded:

1.* 코드 2.2.6에 따라 설치된 승인받은 복원성 계산기기를 사용하여 손상/비손상 복원성 요건을 갖추었음이 검증된 조건으로만 적하되어야 함.

only in accordance with loading conditions verified compliant with intact and damage stability requirements using the approved stability instrument f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2.6 of the Code.

2.* 코드 2.2.7에 의해 2.2.6의 요구사항이 면제되거나, 코드 2.2.6에 의해 요구되는 승인된 복원성 계산기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승인된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적하되어야 함.

where a dispensation permitted by paragraph 2.2.7 of the Code applies and the approved stability instrument required by paragraph 2.2.6 of the Code not fitted, loading shall be made in accordance with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approved methods:

1.)* 위 제6호에 따른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자료에서 제시된 조건에 따라 적하; 또는

in accordance with the loading conditions provided in the approved loading and stability information booklet referred to in 6 above; or,

2.)* 승인된 방법에 의해 원격으로 검증된 조건에 따라 적하; 또는

in accordance with loading conditions verified remotely using an approved means; or

3.)* 위 제6호에 따른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자료에 규정되어 있는 승인된 범위 내의 조건에 따라 적하;

in accordance with a loading condition which lies within an approved range of conditions defined in the approved loading and stability information booklet referred to in 6 above; or

4.)* 위 제6호에 따른 적하 및 복원성 자료에 규정되어 있는 승인된 KG/GM 값을 사용하여 검증된 조건에 따라 적하;

in accordance with a loading condition verified using approved critical KG/GM data defined in the approved loading and stability information booklet referred to in 6 above; and

3.* 이 증서에 추가된 적하제한 조건을 따라야 함.

(5면)

이 증서 발급을 위한 검사완료일:

Completion date of the survey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 _____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_____ 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_____ on the _____ day of _____.

_____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인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글 및 영문)

선 급 법 인 명(한글 및 영문)

(6면)

검 사 의 확 인

ENDORSEMENT FOR ANNUAL AND INTERMEDIATE SURVEYS

이 증서는 선박이 코드의 제1.4.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관련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 survey required by 1.4.2 of the Code,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연 차 검 사

Annu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연차/중간* 검사

Annual/Intermediate*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연차/중간* 검사

Annual/Intermediate*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7면)

제1.4.6.8.3항에 따른 연차 검사/중간 검사
Annual/intermediate survey in accordance with 1.4.6.8.3

이 증서는 선박이 코드 제1.4.6.8.3항에 따른 연차/중간 검사 결과 코드의 관련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n annual/intermediate* survey in accordance with 1.4.6.8.3 of the Code,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제1.4.6.3항이 적용되는 경우 증서의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일 때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certificate if valid for less than 5 years where 1.4.6.3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코드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므로 코드의 제1.4.6.3항에 따라 _____까지 유효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and this certificate should, in accordance with
1.4.6.3 of the Code,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8면)

제1.4.6.5/1.4.6.6항이 적용되는 경우 검사 예정 항에 도착 시까지

또는 유예기간까지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validity of the certificate until reaching the
port of survey or for a period of grace where 1.4.6.5/1.4.6.6 applies

이 증서는 코드 제1.4.6.5*/1.4.6.6* 항에 따라 _____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is certificate should, in accordance with 1.4.6.5*/1.4.6.6* of the Code,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제1.4.6.8항이 적용되는 경우 연차일을 앞당기는 것에 대한 이서

Endorsement for advancement of anniversary date where 1.4.6.8 applies

코드 제 1.4.6.8항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_____이다.

In accordance with 1.4.6.8 of the Code, the new anniversary date is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9면)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 별지 1

ATTACHMENT 1 TO THE INTERNATIONAL CERTIFICATE OF FITNESS
FOR THE CARRIAGE OF LIQUEFIED GASES IN BULK

이 별지는 전 4항에 기재된 화물 및 운송조건에서 계속됨
Continued list of products to those specified in section 3. and the conditions of their carriage.

화 물 Products	운 송 조 건 (탱 크 번 호 등) Conditions of carriage (tank numbers, etc.)
법제처	442

(10면)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 별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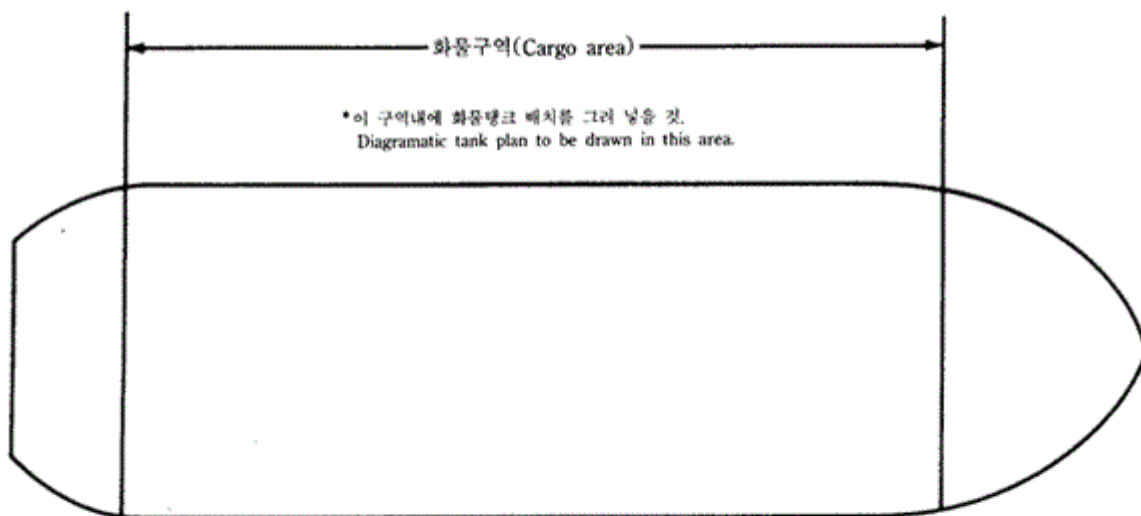
ATTACHMENT 2 TO THE INTERNATIONAL CERTIFICATE OF FITNESS
FOR THE CARRIAGE OF LIQUEFIED GASES IN BULK탱 크 배 치 도
TANK PLAN

선 명

Name of ship: _____

선박번호 또는 호출부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_____



날 짜

Date: _____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인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글 및 영문)

선 급 법 인 명(한글 및 영문)

[별지 제16호의2서식] <개정 2021. 6. 30.>

증서번호 제 _____ 호
Cert. No. _____

국 제 액 화 가 스 산 적 운 송 적 합 증 서
INTERNATIONAL CERTIFICATE OF FITNESS FOR THE CARRIAGE
OF LIQUEFIED GASES IN BULK

대 한 민 국
REPUBLIC OF KOREA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코드」[해사안전위원회 결의 17(58)에 의해 개정된 해사안전위원회 결의 5(48)]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de for the Construction and Equipment of Ships Carrying Liquefied Gases in Bulk(resolution MSC.5(48)) as amended by resolution MSC.17(58))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y _____

선 명 Name of Ship	선 박 번 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선 적 항 Port of Registry	화 물 용 적 Cargo Capacity(m ³)	선 형 Ship Type	IMO 번호 IMO Number

용골을 거치한 날자, 이와 동등한 건조단계에 도달한 날자 또는 액화가스산적운송선으로의 개조가 시작된 날자(개조선인 경우) :

Date on which keel was laid or ship was at a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or, (in the case of a converted ship) date on which conversion to a gas carrier was commenced : _____ , _____

이 선박은 규칙의 다음 개정에 대하여 충분히 적합함:

The ship also complies fully with the following amendments to the Code:

3 이 선박은 규칙의 모든 관련 작업 요건이 준수될 것을 조건으로 다음 화물의 산적 운송에 적합함
That the ship is suitable for the carriage in bulk of the following products, provided that all relevant operational provisions of the Code are observed.

화 물 Products	운 송 조 건* Conditions of carriage*				
	탱크번호 Tank Numbers	최저온도 Minimum Temperature (°C)	최대입력 Maximum Pressure (kg/m²)	최대밀도 Maximum Density	탱크 적하 조건 Tank Loading Condition
법제처				450	

4 규칙 1.4*/2.8.2*에 따라 이 선박에 대한 규칙의 규정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정되었음:

That, in accordance with 1.4*/2.8.2*, the provisions of the Code are modified in respect of the ship in the following manner:

5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자료가 규칙 2.2.5에 따라 본선에 제공되고 있음:

That the loading and stability information booklet required by paragraph 2.2.5 of the Code has been supplied to the ship in an approved form:

6 이 선박은 다음과 같이 적하되어야 함:

That the ship must be loaded:

1* 규칙 2.2.6에 따라 설치된 승인받은 복원성 계산기기를 사용하여 손상/비손상 복원성 요건을 갖추었음이 검증된 조건에서만 적하되어야 함.

only in accordance with loading conditions verified compliant with intact and damage stability requirements using the approved stability instrument f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2.6 of the Code.

2* 규칙 2.2.7에 의해 2.2.6의 요구사항이 면제되거나, 규칙 2.2.6에 의해 요구되는 승인된 복원성 계산기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승인된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적하되어야 함.

where a dispensation permitted by paragraph 2.2.7 of the Code applies and the approved stability instrument required by paragraph 2.2.6 of the Code not fitted, loading shall be made in accordance with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approved methods.

1)* 위 제5호에 따른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자료에 제시된 조건에 따라 적하; 또는

in accordance with the loading conditions provided in the approved loading and stability information booklet referred to in 5 above; or

2)* 승인된 방법에 의해 원격으로 검증된 조건에 따라 적하; 또는

in accordance with loading conditions verified remotely using an approved means; or

3)* 위 제5호에 따른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자료에 규정되어 있는 승인된 범위 내의 조건에 따라 적하; 또는

in accordance with a loading condition which lies within an approved range of conditions defined in the approved loading and stability information booklet referred to in 5 above; or

4)* 위 제5호에 따른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자료에 규정되어 있는 승인된 KG/GM 값을 사용하여 검증된 조건에 따라 적하;

in accordance with a loading condition verified using approved critical KG/GM data defined in the approved loading and stability information booklet referred to in 5 above;

3* 이 증서에 추가된 적하 제한 조건을 따라야 함.

in accordance with the loading limitations appended to this Certificate.

만약 위의 적하자료에 의한 것 이외의 방법으로 적하하려는 경우는 그 적하 조건의 판별에 필요한 계산서를 미리 주 관청 또는 주관청에 의하여 인정된 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Where it is required to load the ship other than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instruction, then the necessary calculations to justify the proposed loading conditions should be communicated to the certifying Administration who may authorize in writing the adoption of the proposed loading condition.**

이 증서는 규칙 제1.5절에 따른 검사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까지 유효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_____ day of _____ subject to surveys in accordance with 1.5 of the Code.

이 증서 발급을 위한 검사완료일:

Completion date of the survey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 _____

검 사 의 확 인

ENDORSEMENT FOR ANNUAL AND INTERMEDIATE SURVEYS

이 증서는 선박이 제1.5.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관련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 survey required by 1.5.2 of the Code,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연 차 검 사

Annu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연차·/중간· 검사

Annual·/Intermediate·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연차·/중간· 검사

Annual·/Intermediate·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제1.5.6.8.3항에 따른 연차 검사/중간 검사
Annual/intermediate survey in accordance with 1.5.6.8.3

이 증서는 선박이 규칙 제1.5.6.8.3항에 따른 연차·/중간·검사 결과 규칙의 관련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n annual·/intermediate· survey in accordance with 1.5.6.8.3 of the Code,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제1.5.6.3항이 적용되는 경우 증서의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일 때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certificate if valid for less than 5 years where 1.5.6.3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규칙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므로 규칙의 제1.5.6.3항에 따라 _____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and this certificate should, in accordance with 1.6.6.3 of the Code,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정기 검사 완료 후 제1.5.6.4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이서
Endorsement where the renewal survey has been completed and 1.5.6.4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규칙의 관련 ~~법제체~~ 적합하므로 규칙의 1.5.6.4항에 따라 _____ 456 _____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1.5.6.5/1.5.6.6항이 적용되는 경우 검사 예정 항에 도착 시까지
또는 유예기간까지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validity of the certificate until reaching the
port of survey or for a period of grace where 1.5.6.5/1.5.6.6 applies

이 증서는 규칙 제1.5.6.5+/1.5.6.6+ 항에 따라 _____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is certificate should, in accordance with 1.6.6.5+/1.6.6.6+ of the Code,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제1.5.6.8항이 적용되는 경우 연차일을 앞당기는 것에 대한 이서
Endorsement for advancement of anniversary date where 1.5.6.8 applies

규칙 제 1.5.6.8항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_____ 이다.

In accordance with 1.5.6.8 of the Code, the new anniversary date is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규칙 제 1.5.6.8항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_____ 이다.

In accordance with 1.5.6.8 of the Code, the new anniversary date is _____.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 별지 1

ATTACHMENT 1 TO THE INTERNATIONAL CERTIFICATE OF FITNESS
FOR THE CARRIAGE OF LIQUEFIED GASES IN BULK

이 별지는 전 3항에 기재된 화물 및 운송조건에서 계속됨
Continued list of products to those specified in section 3, and the conditions of their carriage.

화 물 Products	운 송 조 건 (탱 크 번 호 등) Conditions of carriage (tank numbers, etc.)
법제처	460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 별지 2

ATTACHMENT 2 TO THE INTERNATIONAL CERTIFICATE OF FITNESS
FOR THE CARRIAGE OF LIQUEFIED GASES IN BUL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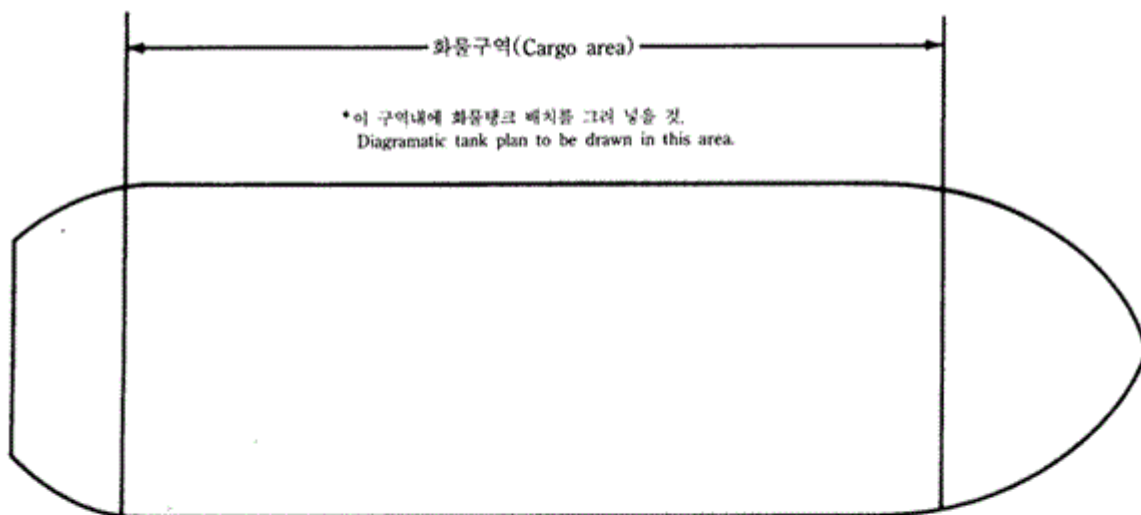
탱 크 배 치 도
TANK PLAN

선 명

Name of ship: _____

선박번호 또는 호출부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_____



날 자

Date: _____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인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글 및 영문)
선 급 법 인 명(한글 및 영문)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1. 6. 30.>

증서번호 제 _____ 호
Cert. No. _____

액 화 가 스 산 적 운 송 적 합 증 서
CERTIFICATE OF FITNESS FOR THE CARRIAGE
OF LIQUEFIED GASES IN BULK

대 한 민 국
REPUBLIC OF KOREA

「액화가스산적운송코드」(해사안전위원회 결의 25(60)에 따라 개정된 총회 결의 A.328(IX))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Code for the Construction and Equipment of Ships Carrying Liquefied Gases in Bulk(resolution A.328(IX) as amended by resolution MSC. 25(60))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y _____

선 명 Name of Ship	선 박 번 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선 적 항 Port of Registry	화 물 용 적 Cargo Capacity(m ³)	선 형 Ship Type	IMO 번호 IMO Number

용골을 거치한 날짜, 이와 동등한 건조단계에 도달한 날짜 또는 액화가스산적운송선으로의 개조가 시작된 날짜(개조선인 경우) :

Date on which keel was laid or ship was at a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or, (in the case of a converted ship) date on which conversion to a gas carrier was commenced: _____ , _____

이 선박은 규칙의 다음 개정에 대하여 충분히 적합함:

The ship also complies fully with the following amendments to the Code:

이 선박은 규칙 중 다음 규정의 적용이 면제됨:

The ship is exempted from compliance with the following provisions of Code:

4 이 선박은 규칙의 모든 관련 작업 요건이 준수될 것을 조건으로 다음 화물의 산적 운송에 적합함

That the ship is suitable for the carriage in bulk of the following products, provided that all relevant operational provisions of the Code are observed.

화 물 Products	운 송 조 건 Conditions of carriage [†]				
	탱크번호 Tank Numbers	최저온도 Minimum Temperature (°C)	최대압력 Maximum Pressure (kg/m ²)	최대밀도 Maximum Density	탱크적하조건 Tank Loading Condition
법제처				468	

5. 규칙 1.5*/2.7*에 따라 이 선박에 대한 규칙의 규정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정되었음:

That, in accordance with 1.5*/2.7*, the provisions of the Code are modified in respect of the ship in the following manner:

6.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자료가 규칙 2.2.3에 따라 본선에 제공되고 있음:

That the loading and stability information booklet required by paragraph 2.2.3 of the Code has been supplied to the ship in an approved form:

7. 이 선박은 다음과 같이 적하되어야 함:

That the ship must be loaded:

1.* 규칙 2.2.4에 따라 설치된 승인받은 복원성 계산기기를 사용하여 손상/비손상 복원성 요건을 갖추었음이 검증된 조건에서만 적하되어야 함.

only in accordance with loading conditions verified compliant with intact and damage stability requirements using the approved stability instrument f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2.4 of the Code

2.* 규칙 2.2.5에 의해 2.2.4의 요구사항이 면제되거나, 규칙 2.2.4에 의해 요구되는 승인된 복원성 계산기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승인된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적하되어야 함.

where a dispensation permitted by paragraph 2.2.5 of the Code applies and the approved stability instrument required by paragraph 2.2.4 of the Code not fitted, loading shall be made in accordance with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approved methods.

1)* 위 제6호에 따른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자료에 제시된 조건에 따라 적하; 또는

in accordance with the loading conditions provided in the approved loading and stability information booklet referred to in 6 above; or

2)* 승인된 방법에 의해 원격으로 검증된 조건에 따라 적하; 또는

in accordance with loading conditions verified remotely using an approved means; or

3)* 위 제6호에 따른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자료에 규정되어 있는 승인된 범위 내의 조건에 따라 적하; 또는 in accordance with a loading condition which lies within an approved range of conditions defined in the approved loading and stability information booklet referred to in 6 above; or

4)* 위 제6호에 따른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자료에 규정되어 있는 승인된 KG/GM 값을 사용하여 검증된 조건에 따라 적하;

in accordance with a loading condition verified using approved critical KG/GM data defined in the approved loading and stability information booklet referred to in 6 above;

3.* 이 증서에 추가된 적하 제한 조건을 따라야 함.

in accordance with the loading limitations appended to this Certificate.

만약 위의 적하자료에 의한 것 이외의 방법으로 적하하고자 할 경우는 그 적하 조건의 판별에 필요한 계산서를 미리 주관청 또는 주관청에 의하여 인정된 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Where it is required to load the ship other than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instruction, then the necessary calculations to justify the proposed loading conditions should be communicated to the certifying Administration who may authorize in writing the adoption of the proposed loading condition.**

이 증서는 규칙 제1.6절에 따른 검사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 유효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_____ day of _____ subject to surveys in accordance with _____ 1.6 of the Code.

검 사 의 확 인

ENDORSEMENT FOR ANNUAL AND INTERMEDIATE SURVEYS

이 증서는 선박이 제16.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관련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 survey required by 16.2 of the Code,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연 차 검 사

Annu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연차·/중간· 검사

Annual·/Intermediate·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연차·/중간· 검사

Annual·/Intermediate·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제1.6.6.8.3항에 따른 연차 검사/중간 검사
Annual/intermediate survey in accordance with 1.6.6.8.3

이 증서는 선박이 규칙 제1.6.6.8.3항에 따른 연차·/중간·검사의 결과 규칙의 관련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n annual·/intermediate· survey in accordance with 1.6.6.8.3 of the Code,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제1.6.6.3항이 적용되는 경우 증서의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일 때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certificate if valid for less than 5 years where 1.6.6.3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규칙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므로 규칙의 제1.6.6.3항에 따라 _____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and this certificate should, in accordance with 1.6.6.3 of the Code,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정기 검사 완료 후 제1.6.6.4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이서

Endorsement where the renewal survey has been completed and 1.6.6.4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규칙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므로 규칙의 1.6.6.4항에 따라

제1.6.6.5/1.6.6.6항이 적용되는 경우 검사 예정 항에 도착 시까지
또는 유예기간까지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validity of the certificate until reaching the
port of survey or for a period of grace where 1.6.6.5/1.6.6.6. applies

이 증서는 규칙 제1.6.6.5*/1.6.6.6* 항에 따라 _____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is certificate should, in accordance with 1.6.6.5*/1.6.6.6* of the Code,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제1.6.6.8항이 적용되는 경우 연차일을 앞당기는 것에 대한 이서

Endorsement for advancement of anniversary date where 1.6.6.8 applies

규칙 제1.6.6.8항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_____입니다.

In accordance with 1.6.6.8 of the Code, the new anniversary date is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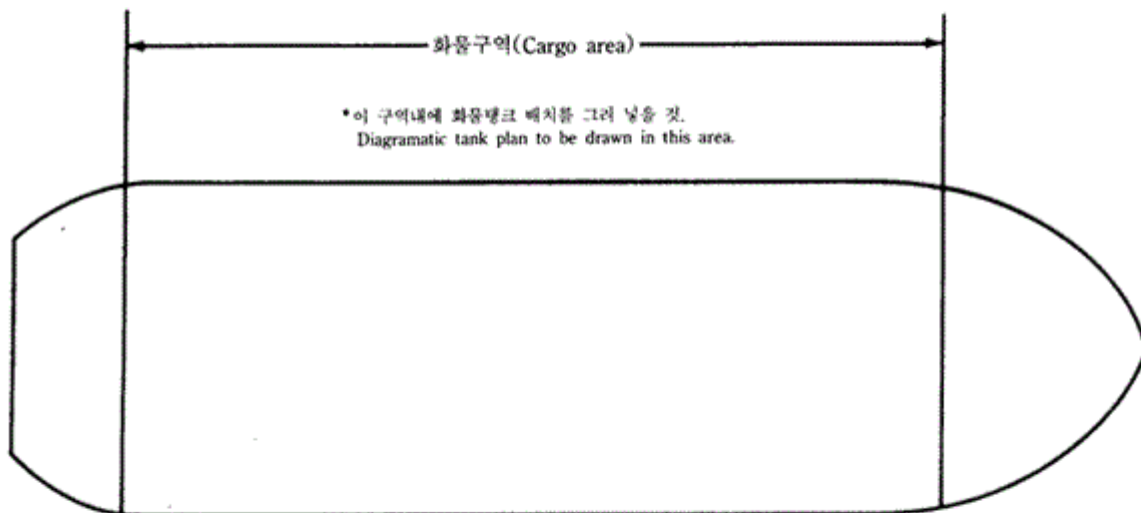
Date: _____

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 별지 2
ATTACHMENT 2 TO THE CERTIFICATE OF FITNESS
FOR THE CARRIAGE OF LIQUEFIED GASES IN BULK

명 크 배 치 도
TANK PLAN

선 명
Name of ship: _____

선박번호 또는 호출부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_____



날 자
Date: _____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인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글 및 영문)

선 급 법 인 명(한글 및 영문)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0. 6. 17.>

(제1쪽)

증서번호 제 _____ 호
Cert. No. _____

국 제 위 험 화 학 품 산 적 운 송 적 합 증 서
INTERNATIONAL CERTIFICATE OF FITNESS FOR THE CARRIAGE
OF DANGEROUS CHEMICALS IN BULK

대 한 민 국
REPUBLIC OF KOREA

「국제선적화학물코드」 [(해사안전위원회 결의 176(79) 및 해양환경보호위원회 결의 119(52)]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_____ 발령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de for the Construction and Equipment of Ships Carrying Dangerous Chemicals in Bulk [resolution MSC, 176(79) and MEPC, 119(52)]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y _____.

선 명 Name of Ship	선 박 번 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선 적 항 Port of Registry	총 톤 수 Gross Tonnage	선 형 Ship Type	IMO 번호 ¹⁾ IMO Number ¹⁾

용골을 거치한 날짜, 이와 동등한 건조단계에 도달한 날짜 또는 위험화학품선적운송선으로의 개조가 시작된 날짜(개조선인 경우):

Date on which keel was laid or on which the ship was at a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or, (in the case of a converted ship) date on which conversion to a chemical tanker was commenced: _____.

이 선박은 규칙의 다음 개정에 대하여 충분히 적합함:

The ship also complies fully with the following amendments to the Code:

이 선박은 규칙 중 다음 규정의 적용이 면제됨:

The ship is exempted from compliance with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e Code:

이 증서는 다음 사항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1. 이 선박은 규칙 1.5절에 따라 검사를 하였음

That the ship has been survey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section 1.5 of the Code.

2. 이 검사의 결과, 이 선박의 구조와 설비 및 그 상태가 모든 점에서 만족하며, 규칙의 제규정에 적합함

That the survey showed that the construction and equipment of the ship and the conditions thereof are in all respects satisfactory and that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3. 이 선박은 73/78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II의 부록 4에 따른 지침서를 비치하고, 이 선박의 장치 및 설비는 동 지침서에 규정된 모든 점에서 적합함

That the ship has been provided with a Manual in accordance with Appendix 4 of Annex II of MARPOL 73/78 as called for by regulation 14 of Annex II, and that the arrangements and equipment of the ship prescribed in the Manual are in all respects satisfactory.

(제2쪽)

4. 이 선박은 규칙 및 73/78 해양오염방지협약의 모든 관련 작업 요건이 준수될 것을 조건으로 다음 물질의 산적 운송에 적합함

That the ship meets the requirements for the carriage in bulk of the following products, provided that all relevant operational provisions of the Code and Annex II of MARPOL 73/78 are observed.

화 물 Products	운송조건(탱크 번호 등) Conditions of carriage(tank numbers, etc.)	오염분류 Pollution Category
추가서명과 날짜가 적힌 별지 1에 계속됨²⁾ Continued on attachment 1, additional signed and dated sheets²⁾. 이 표에 기재되어 있는 탱크 번호는 서명 및 날짜가 적힌 별지 2의 탱크 배치도에 명시되어 있음 Tank numbers referred to in this list are identified on attachment 2, signed and dated tank plan.		

5. 규칙 1.4/2.8.2²⁾에 따라 이 선박에 대한 규칙의 규정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정되었음 :

That, in accordance with 1.4/2.8.2²⁾, the provisions of the Code are modified in respect of the ship in the following manner:

6.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자료가 규칙 2.2.5에 따라 본선에 제공되고 있음:

That the loading and stability information booklet required by paragraph 2.2.5 of the Code has been supplied to the ship in an approved form:

7. 이 선박은 다음과 같이 적하되어야 함:

That the ship must be loaded:

1. 규칙 2.2.6에 따라 설치된 승인받은 복원성 계산기기를 사용하여 손상/비손상 복원성 요건을 갖추었음이 검증된 조건으로만 적하되어야 함²⁾.
only in accordance with loading conditions verified compliant with intact and damage stability requirements using the approved stability instrument f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2.6 of the Code²⁾.
2. 규칙 2.2.7에 의해 2.2.6의 요구사항이 면제되거나, 규칙 2.2.6에 의해 요구되는 승인된 복원성 계산기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승인된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적하되어야 함²⁾.
where a waiver permitted by paragraph 2.2.7 of the Code is granted and the approved stability instrument required by paragraph 2.2.6 of the Code is not fitted, loading shall be made in accordance with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approved methods²⁾.
 - 1) 위 제6호에 따른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자료에 제시된 조건에 따라 적하²⁾; 또는
in accordance with the loading conditions provided in the approved loading and stability information booklet referred to in 6 above²⁾; or
 - 2) 승인된 방법에 의해 원격으로 검증된 조건에 따라 적하²⁾; 또는
in accordance with loading conditions verified remotely using an approved means²⁾; or
 - 3) 위 제6호에 따른 적하 및 복원성 자료에 규정되어 있는 승인된 범위 내의 조건에 따라 적하²⁾; 또는
in accordance with a loading condition which lies within an approved range of conditions defined in the approved loading and stability information booklet referred to in 6 above²⁾; or
 - 4) 위 제6호에 따른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자료에 규정되어 있는 승인된 KG/GM 값을 사용하여 검증된 조건에 따라 적하²⁾;
in accordance with a loading condition verified using approved critical KG/GM data defined in the approved loading and stability information booklet referred to in 6 above²⁾;
3. 이 증서에 부가된 적하 제한 조건을 따라야 함²⁾.
in accordance with the loading limitations appended to this Certificate²⁾.

(제3쪽)

만약 위의 적하자료에 의한 것 이외의 방법으로 적하하려는 경우 그 적하조건의 판별에 필요한 계산서를 미리 주관청 또는 주관청에 의하여 인정된 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³⁾

Where it is required to load the ship other than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instruction, then the necessary calculations to justify the proposed loading conditions shall be communicated to the certifying Administration who may authorize in writing the adoption of the proposed loading condition.³⁾

이 증서는 규칙 제15절에 따른 검사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_____년 _____월 _____일⁴⁾까지 유효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_____ day of _____⁴⁾ subject to surveys in accordance with 1.5 of the Code.

이 증서 발급을 위한 검사완료일:

Completion date of the survey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 _____.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_____ on the _____ day of _____.

해양수산부장관인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글 및 영문)

선급법인명(한글 및 영문)

증서의 완료에 관한 주의:

Notes on completion of Certificate:

1. 이 증서는 1974 SOLAS협약 및 73/78 MARPOL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만 발급할 수 있다.

The Certificate can be issued only to ships entitled to fly the flags of States which are both a Contracting Government to the 1974 SOLAS Convention and a Party to MARPOL 73/78.

2. 선박의 형식: 이 란의 기입사항은 모든 관련 권고와 관련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예) "2형식"으로 기입하는 것은 코드에서 규정된 모든 관점에서 형식을 의미한다.

Ship Type: Any entry under this column must relate to all relevant recommendations, e.g. an entry "Type 2" means type 2 in all respects prescribed by the Code.

3. 화물: 코드의 제17장에 등록된 화물, 또는 코드 1.16항에 따라 주관청에 의하여 평가된 화물이 등록되어야 한다. 후자의 "새로운" 화물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명시된 특별 요건을 주목하여야 한다.

Products: Products listed in Chapter 17 of the Code, or which have been evaluated by the Administration in accordance with 1.16 of the Code, shall be listed. In respect of the latter "new" products, any special

(제4쪽)

검 사 의 확 인

ENDORSEMENT FOR ANNUAL AND INTERMEDIATE SURVEYS

이 증서는 선박이 제15.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관련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 survey required by 15.2 of the Code,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연 차 검 사

Annu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연차/중간²⁾ 검사Annual/Intermediate²⁾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연차/중간²⁾ 검사Annual/Intermediate²⁾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제5쪽)

제1.5.6.8.3항에 따른 연차검사/중간검사
Annual/intermediate survey in accordance with 1.5.6.8.3

이 증서는 선박이 규칙 제1.5.6.8.3항에 따른 연차/중간²⁾검사의 결과 규칙의 관련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n annual/intermediate²⁾ survey in accordance with 1.5.6.8.3 of the Code,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제1.5.6.3항이 적용되는 경우 증서의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일 때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certificate if valid for less
than 5 years where 1.5.6.3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규칙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므로 규칙의 제1.5.6.3항에 따라 _____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and this certificate should, in accordance with 1.5.6.3 of the Code,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정기검사 완료 후 제1.5.6.4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이서
Endorsement where the renewal survey has been completed and 1.5.6.4 applies

(제6쪽)

제1.5.6.5/1.5.6.6항이 적용되는 경우 검사 예정 항에 도착시까지
또는 유예기간까지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validity of the certificate until reaching the
port of survey or for a period of grace where 1.5.6.5/1.5.6.6. applies

이 증서는 규칙 제1.5.6.5/1.5.6.6²⁾ 항에 따라 _____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is certificate should in accordance with 1.5.6.5/1.5.6.6²⁾ of the Code,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제1.5.6.8항이 적용되는 경우 연차일을 앞당기는 것에 대한 이서
Endorsement for advancement of anniversary date where 1.5.6.8 applies

규칙 제 1.5.6.8항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_____입니다.
In accordance with 1.5.6.8 of the Code, the new anniversary date is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제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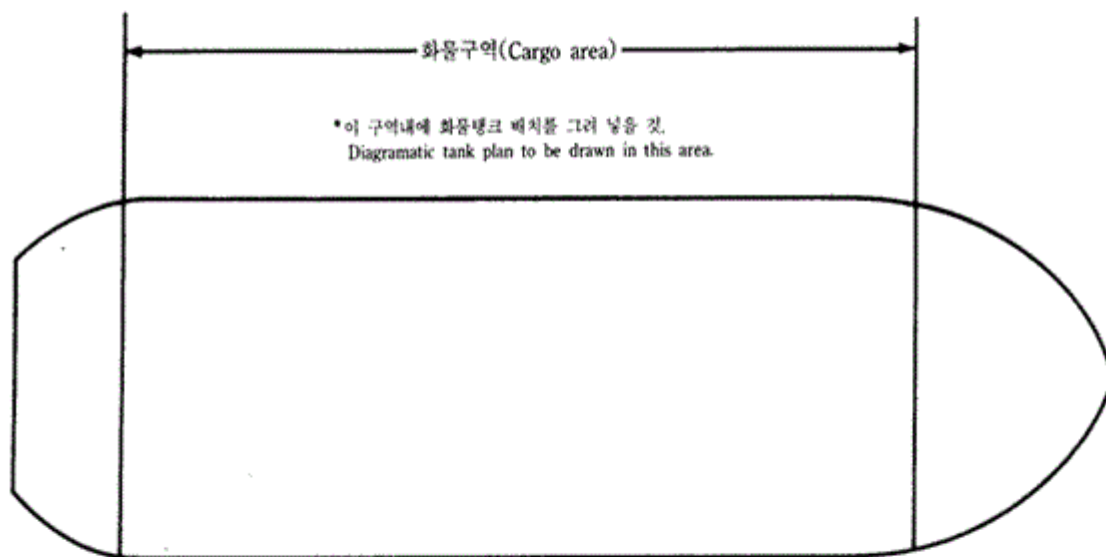
국제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 별지 2

ATTACHMENT 2 TO THE INTERNATIONAL CERTIFICATE OF FITNESS
FOR THE CARRIAGE OF DANGEROUS CHEMICALS IN BULK

탱 크 배 치 도
TANK PLAN

선 명
Name of ship: _____

선박번호 또는 호출부호
Distinctive No. or letters: _____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0. 6. 17.>

증서번호 제 _____ 호
Cert. No. _____

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
CERTIFICATE OF FITNESS FOR THE CARRIAGE
OF DANGEROUS CHEMICALS IN BULK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위험화학품산적운송코드」 [해양환경보호위원회 결의 41(29) 및 해상안전위원회 결의 18(58)에 따라 개정된 해양환경
보호위원회 결의 20(22) 및 해상안전위원회 결의 9(53)]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Code for the Construction and Equipment of Ships Carrying Dangerous
Chemicals in Bulk(resolution MEPC.20(22) and MSC.9(53), as amended by resolution MEPC.41(29) and resolution
MSC.18(58))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y _____.

선명 Name of Ship	선박번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선적항 Port of Registry	총톤수 Gross Tonnage	선형 Ship Type	IMO 번호 IMO Number

용골을 거치한 날짜, 이와 같은 건조단계에 도달한 날짜 또는 위험화학품산적운송선으로의 개조가 시작된 날짜(개조선인 경우):
Date on which keel was laid or ship was at a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or, (in the case of a converted ship)
date on which conversion to a chemical tanker was commenced: _____, _____

건조계약일이 이루어진 날짜:
Date on which the building contract was placed: _____, _____

이 선박은 규칙의 다음 개정에 대하여 충분히 적합함:
The ship also complies fully with the following amendments to the Code:

이 선박은 규칙 중 다음 규정의 적용이 면제됨
The ship is exempted from compliance with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e Code:

5. 규칙 1.7.3*/2.25*에 따라 이 선박에 대한 규칙의 규정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정되었음:

That, in accordance with 1.7.3*/2.25*, the provisions of the Code are modified in respect of the ship in the following manner:

6.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지침서가 규칙 2.21.1에 따라 본선에 제공되고 있음.

That the loading and stability manuals required by paragraph 2.21.1 of the Code have been supplied to the ship in an approved form.

7. 이 선박은 다음과 같이 적하되어야 함:

That the ship must be loaded:

1* 규칙 2.21.2에 따라 설치된 승인받은 복원성 계산기기를 사용하여 손상/비손상 복원성 요건을 갖추었음이 검증된 조건으로만 적하되어야 함.

only in accordance with loading conditions verified compliant with intact and damage stability requirements using the approved stability instrument f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21.2 of the Code.

2* 규칙 2.21.3에 의해 2.21.2의 요구사항이 면제되거나, 규칙 2.21.2에 의해 요구되는 승인된 복원성 계산기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승인된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적하되어야 함.

where a waiver permitted by paragraph 2.21.3 of the Code is granted and the approved stability instrument required by paragraph 2.21.2 of the Code is not fitted, loading shall be made in accordance with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approved methods.

1) 위 제6호에 따른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지침서에 제시된 적하 조건에 따라 적하; 또는

in accordance with the loading conditions provided in the approved loading and stability manual referred to in 6 above; or

2) 승인된 방법에 의해 원격으로 검증된 조건에 따라 적하; 또는

in accordance with loading conditions verified remotely using an approved means; or

3) 위 제6호에 따른 적하 및 복원성 지침서에 규정되어 있는 승인된 범위 내의 조건에 따라 적하; 또는

in accordance with a loading condition which lies within an approved range of conditions defined in the approved loading and stability manual referred to in 6 above; or

4) 위 제6호에 따른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지침서에 규정되어 있는 승인된 KG/GM 값을 사용하여 검증된 조건에 따라 적하;

in accordance with a loading condition verified using approved critical KG/GM data defined in the approved loading and stability manual referred to in 6 above;

3* 이 증서에 추가된 적하 제한 조건을 따라야 함.

in accordance with the loading limitations appended to this Certificate.

만약 위의 적하자료에 의한 것 이외의 방법으로 적하하려는 경우 그 적하조건의 판별에 필요한 계산서를 미리 주관청 또는 주관청에 의하여 인정된 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Where it is required to load the ship other than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instruction, then the necessary calculations to justify the proposed loading conditions should be communicated to the certifying Administration who may authorize in writing the adoption of the proposed loading condition.**

이 증서는 규칙 제16조에 따른 검사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 유효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_____ day of _____ subject to surveys and accordance with 1.6 of the Code.

검 사 의 확 인

ENDORSEMENT FOR ANNUAL AND INTERMEDIATE SURVEYS

이 증서는 선박이 제16.2항에 따라 요구되는 검사결과 관련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 survey required by 1.6.2 of the Code,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연 차 검 사

Annu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연차·/중간· 검사

Annual·/Intermediate·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연차·/중간· 검사

Annual·/Intermediate·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제1.6.6.8.3항에 따른 연차검사/중간검사
Annual/intermediate survey in accordance with 1.6.6.8.3

이 증서는 선박이 규칙 제1.6.6.8.3항에 따른 연차·/중간·검사의 결과 규칙의 관련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n annual·/intermediate· survey in accordance with 1.6.6.8.3 of the Code,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제1.6.6.3항이 적용되는 경우 증서의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일 때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certificate if valid for less than 5 years where 1.6.6.3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규칙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므로 규칙 제1.6.6.3항에 따라 _____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and this certificate should, in accordance with 1.6.6.3
of the Code,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정기검사 완료 후 제1.6.6.4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이서
법제처 506
Endorsement where the renewal survey has been completed and 1.6.6.4 applies

제1.6.6.5/1.6.6.6항이 적용되는 경우 검사 예정 항에 도착 시까지
또는 유예기간까지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validity of the certificate until reaching the
port of survey or for a period of grace where 1.6.6.5/1.6.6.6. applies

이 증서는 규칙 제1.6.6.5*/1.6.6.6* 항에 따라 _____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is certificate should, in accordance with 1.6.6.5*/1.6.6.6* of the Code, be accepted as valid until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제1.6.6.8항이 적용되는 경우 연차일을 앞당기는 것에 대한 이서
Endorsement for advancement of anniversary date where 1.6.6.8 applies

규칙 제1.6.6.8항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_____입니다.
In accordance with 1.6.6.8 of the Code, the new anniversary date is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 별지 1

ATTACHMENT 1 TO THE CERTIFICATE OF FITNESS FOR THE CARRIAGE
OF DANGEROUS CHEMICALS IN BULK

이 별지는 제4항에 기재된 화물 및 운송조건에 계속임
Continued list of products to those specified in section 4, and the conditions of their carriage.

화 물 Products	운 송 조 건 (탱 크 번 호 등) Conditions of carriage (tank numbers, etc.)
법제처	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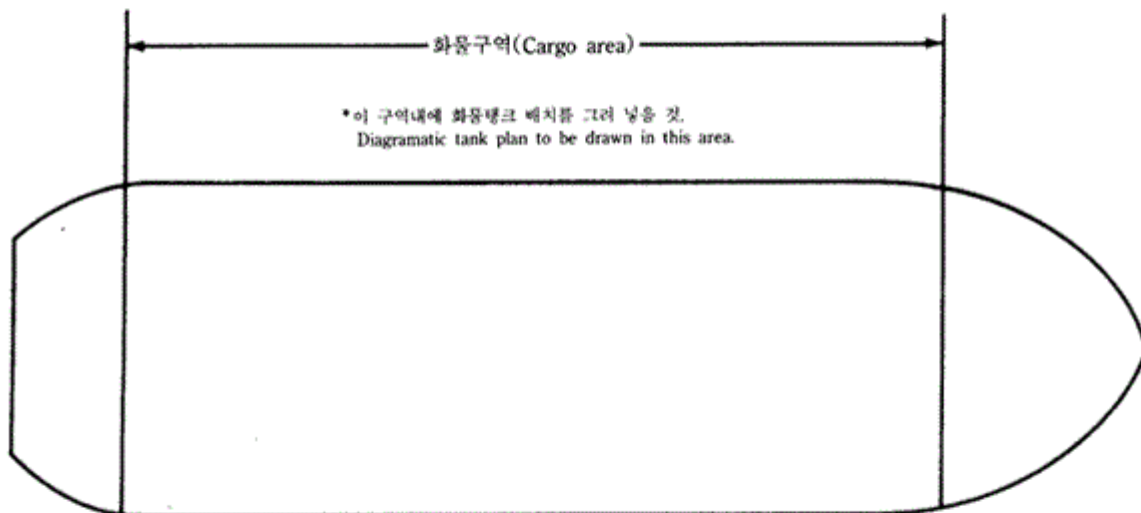
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 별지 2

ATTACHMENT 2 TO THE CERTIFICATE OF FITNESS FOR THE CARRIAGE OF
DANGEROUS CHEMICALS IN BULK

탱 크 배 치 도
TANK PLAN

선 명
Name of ship: _____

선박번호 또는 호출부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_____



Date: _____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인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글 및 영문)

선 급 법 인 명(한글 및 영문)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9. 8. 20.>

증서번호 제 _____ 호

Cert. No. _____



위험물운송적합증서

SPECIAL REQUIREMENTS FOR SHIPS CARRYING DANGEROUS GOODS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이 증서는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제2-2장의 제19.4규칙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합니다.

Issued in pursuance of the requirement of regulation II-2/19.4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as amend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y _____

선명 Name of Ship	선박번호 또는 호출부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선적항 Port of Registry	선형 Ship Type	IMO 번호 IMO Number

이 증서는 다음 사항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 1 이 선박의 구조 및 설비는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제2-2장 제19규칙의 요건에 적합하며, 그리고

that the construction and equipment of the above mentioned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regulation II-2/19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as amended; and

- 2 이 선박은 각각의 물질에 대하여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과 「산적고체화물의 운송을 위한 안전실무규칙」(BC Code)의 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증서에 첨부된 부록에 명시된 것처럼 분류된 위험물의 운송에 적합함

that the ship is suitable for the carriage of those classes of dangerous goods as specified in the appendix hereto, subject to any provisions in the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IMDG) Code and the Code of Safe Practice for Solid Bulk Cargoes (BC Code) for individual substances also being complied with.

이 증서는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 유효합니다.

This document is valid until _____ day of _____.

이 증서 발급을 위한 검사완료일:

Completion date of the survey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 _____

이 증서는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에서 발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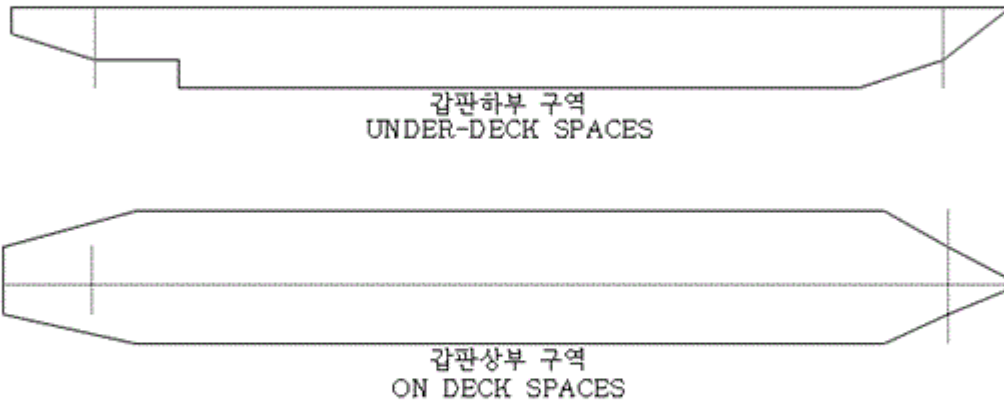
This document is issued at _____ on the _____ day of _____.

법제처

514

부 록
APPENDIX

아래 표의 화물창번호는 그림의 구역에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SPACES TO BE INDICATED IN THE PLANS WITH NUMBERS CORRESPONDING
WITH THE TABLE BELOW



급 CLASS	화물창 HOLD	1	2	3	4	5	6	7	8	9	
1.1 ~ 1.6											
1.4S											
2.1											P 포장된 형태로 허용됨 Indicates PACKAGED GOODS PERMITTED
2.2											
2.3											
3											
FP < 23℃ c.c.											
3											
FP ≥ 23℃ ~ ≤ 61℃ c.c.											
4.1											
4.2											A 포장된 형태 및 산적형태로 허용됨 Indicates PACKAGED AND BULK GOODS ALLOWED
4.3											
5.1											
5.2											
6.1 liquids											
6.1 liquids FP < 23℃ c.c.											
6.1 liquids FP ≥ 23℃ ~ ≤ 61℃ c.c.											
6.1 solids											X 허용되지 않음 NOT ALLOWED
8 liquids											
8 liquids FP < 23℃ c.c.											
8 liquids FP ≥ 23℃ ~ ≤ 61℃ c.c.											
8 solids											
9											

위의 표에서 정보와 관련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Remarks related to the information in the table above as applicable.

주) 산적화물은 각각 화물명과 급으로 표시될 수 있다.
NOTE: Cargoes in bulk may be listed individually by name and class.
법제처

증서번호 제
Cert. No.

호



고속선 안전증서 HIGH SPEED CRAFT SAFETY CERTIFICATE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이 증서에는 설비기록부를 추가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This Certificate should be supplemented by a Record of Equipment.

「국제고속선 안전코드」 [해사안전위원회 결의 36(63)]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DE OF SAFETY FOR HIGH SPEED CRAFT [Resolution MSC. 36(63)]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by _____.

선 명 Name of craft	제조사 형식 및 선번 Manufacturer's mode and hull number	선 박 번 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IMO 번호* IMO number*	선 적 항 Port of registry	총 톤 수 Gross tonnage	선박의 운항구역** Sea areas in which ship is certified to operate (paragraph 14.2.1)***

설계수선에서의 선수 및 선미 의 홀수
Design waterline corresponding to draughts at draught marks of (m) forward, (m) aft

분 류 A 류 여객선 / B 류 여객선 / 화물선***
Category Category A passenger craft/category B passenger craft/cargo craft***

선박의 형식 공기부양선 / 표면효과선 / 수중익선 / 단동선체 / 다동선체 / 그 밖의 선박의 형식(상세히 기재)***
Craft type air-cushion vehicle/surface effect ship/hydrofoil/monohull/multihull/
other(give detail)***

용골 거치일 또는 그와 동등한 건조 단계일, 또는 주요 개조작업의 시작일:
Date on which keel was laid or craft was at a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or on which a major conversion was commenced:

이 증서는 다음 사항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1. 이 선박은 「국제고속선안전코드」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검사되었음
That the above-mentioned craft has been duly surveyed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de of Safety for High Speed Craft.

* 총회 결의서 A.1117(30)에 의해 기구가 채택한 IMO 선박식별번호 체계에 따름
In accordance with the IMO ship identification number scheme adopted by the Organization by resolution A.1117(30).

** A3 해역에서 운항할 수 있도록 인증된 선박의 경우, 인정된 이동식 위성서비스를 괄호 안에 표시할 것
For a ship certified to operate in sea area A3, indicate the recognized mobile satellite service in brackets.

***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2면)

2. 검사의 결과, 이 선박의 구조, 설비, 부착물, 무선설비 및 재료와 이들의 상태가 모든 점에서 만족하며 또한 이 선박은 이 코드의 관련 규정에도 적합함

That the survey showed that the structure, equipment, fittings, radio station arrangements and materials of the craft and the condition thereof are in all respects satisfactory and that the craft complies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3. 구명설비가 제공되는 총인원 및 다음의 구명설비가 제공되는 인원 이하임

That the life-saving appliances are provided for a total number of _____ persons and no more as follows: _____

4. 이 선박은 이 코드의 1.11항에 따라 다음의 동등물을 인정하였음:

That, in accordance with 1.11 of the Code, the following equivalents have been granted in respect of the craft:

해당절	동등한 장비
Paragraph _____	Equivalent Arrangement _____

이 증서는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까지 유효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_____ day of _____.

이 증서 발급을 위한 검사완료일:

Completion date of the survey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 _____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_____ 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_____ on the _____ day of _____.

(3면)

검사의 이서 Endorsement for periodical surveys

이 증서는 선박이 이 코드의 1.5항에 따른 검사결과 관련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 survey required by 1.5 of the Code, this craft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정기적 검사
Periodic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정기적 검사
Periodic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정기적 검사
Periodic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4면)

제1.8.8항이 적용되는 경우 증서의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일 때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Certificate if valid for less than
5 years where 1.8.8 of the Code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규칙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므로 규칙 제1.8.8항에 따라 _____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is craft complies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de, and this Certificate should, in accordance with 1.8.8 of the Code,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정기검사 완료 후 제1.8.9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이서
Endorsement where the renewal survey has been completed
and 1.8.9 of the Code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규칙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므로 규칙 제1.8.9항에 따라 _____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is craft complies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de and this Certificate should, in accordance with 1.8.9 of the Code,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5면)

제1.8.13항이 적용되는 경우 연차일을 앞당기는 것에 대한 이서
Endorsement for the advancement of the anniversary date
where 1.8.13 of the Code applies

규칙 제1.8.13항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_____입니다.

In accordance with 1.8.13 of the Code, the new anniversary date is _____.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규칙 제1.8.13항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_____입니다.

In accordance with 1.8.13 of the Code, the new anniversary date is _____.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6면)

고속선안전증서에 대한 설비기록부
Record of equipment for high speed craft safety certificate

이 기록부는 고속선안전증서에 영구적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This Record shall be permanently attached to the
High Speed Craft Safety Certificate.

국제고속선안전코드에 따른 설비기록부
RECORD OF EQUIPMENT FOR COMPLIANCE WITH THE
INTERNATIONAL CODE OF SAFETY FOR HIGH SPEED CRAFT

1. 선박의 세부사항
Particulars of craft

선 명
Name of craft: _____

제조사 형식 및 선번
Manufacturer's model and hull number: _____

선박번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_____

IMO 번호*
IMO Number*: _____

분 류: A류 여객선 / B류 여객선 / 화물선**
Category: Category A passenger craft/category B passenger craft/cargo craft**

선박의 형식: 공기부양선, 표면효과선, 수중익선, 단동선체, 다동선체, 그 밖의 선박의 형식(상세히 기재)
Craft type: air cushion vehicle, surface effect ship, hydrofoil, monohull, multihull,
other(give details _____)

여객정원
Number of passengers for which certified: _____

무선설비 조작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최소인원
Minimum number of persons with required qualifications to operate the radio installations: _____

2. 구명설비의 상세
Details of life-saving appliances

법제처

528

국가법령정보센터

(7면)

2.3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제3장 제44규칙에 적합한 전폐형 구명정의 수 Number of totally enclosed lifeboats complying with SOLAS regulation III/44***	_____
2.4 그 밖의 구명정 Other lifeboats	_____
2.4.1 수량 Number	_____
2.4.2 종류 Type	_____
3. 구조정의 수 Number of rescue boats	_____
3.1 위의 총 구명정에 포함된 구조정의 수 Number of boats which are included in the total lifeboats shown above	_____
4.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제3장 제38규칙부터 제40규칙까지에 부합하는 적절한 진수장치가 있는 구명뗏목 Liferafts complying with SOLAS regulations III/38 to 40*** for which suitable means of launching are provided	_____
4.1 구명뗏목의 수 Number of liferafts	_____
4.2 구명뗏목에 수용되는 인원 Number of persons accommodated by them	_____
5. 개방전도형 구명뗏목(이 코드의 Annex 10) Open reversible liferafts(Annex 10 of the Code)	_____
5.1 구명뗏목의 수 Number of liferafts	_____
5.2 구명뗏목에 수용되는 인원 Number of persons accommodated by them	_____
6. 감하식 탑승장치의 수 Number of Marine Evacuation System(MES)	_____
6.1 제공되는 인원 Number of persons served by them	_____
7. 구명부환(救命浮環)의 수 Number of lifebuoys	_____
8. 구명조끼의 수	_____

(8면)

3. 무선설비의 상세
Details of radio facilities

항 목 Item	실제 조치 Actual provision	항 목 Item	실제 조치 Actual provision
1. 기본장치 Primary systems		3. 해사안전정보(MSI), 수색 및 구조 관련 정보의 수신을 위한 설비 Facilities for reception of maritime safety information and search and rescue related information	_____
1.1 VHF 무선설비 VHF radio installation		4.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 Emergency Position Indication Radio Beacon(EPIRB)	_____
1.1.1 DSC 인코더 DSC encoder	_____	5. 양방향 VHF 무선전화장비 Two-way VHF radiotelephone apparatus	_____
1.1.2 DSC 수신기 DSC watch receiver	_____	6. 레이더 수색 및 구조 트랜스폰더 또는 AIS 수색 및 구조 송신기 Radar SART or AIS-SART	_____
1.1.3 무선전화 Radiotelephony	_____	7. 2,182kHz 무선전화 조난주파수 청수 수신기 Radiotelephone distress frequency watch receiver on 2,182kHz*	_____
1.2 MF 무선설비 MF radio installation		8. 2,182kHz 무선전화 경보신호 발생장치 Device for generating the radio- telephone alarm signal on 2,182kHz**	_____
1.2.1 DSC 인코더 DSC encoder	_____		
1.2.2 DSC 수신기 DSC watch receiver	_____		
1.2.3 무선전화 Radiotelephony	_____		
1.3 MF/HF 무선설비 MF/HF radio installation			
1.3.1 DSC 인코더 DSC encoder	_____		
1.3.2 DSC 수신기 DSC watch receiver	_____		
1.3.3 무선전화 Radiotelephony	_____		
1.4 인정된 이동식 위성 서비스 선박지 구국 Recognized mobile satellite service ship earth station	_____		
2. 선박-해안 간 조난 경보 전송을 개 시하는 제2차 경보장치 Secondary means of initiating the transmission of ship-to-shore distress alerts	_____		

(9면)

5. 항해장비 및 설비의 상세

Details of navigational systems and equipment

1.1 자기 컴퍼스 Magnetic compass	_____
1.2 자이로 컴퍼스 Gyro-compass	_____
2. 선속거리계 Speed and distance measuring device	_____
3. 음향측심기 Echo-sounding device	_____
4.1 9 GHz 레이더 9 GHz radar	_____
4.2 제2 레이더(3 GHz/9 GHz*) Second radar(3 GHz/9 GHz*)	_____
4.3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ARPA)/자동추적장치(ATA)* Automatic radar plotting aid(ARPA)/Automatic tracking aid(ATA)	_____
5. 위성항법장치/지상파무선항해장치/그 밖의 위치고정장치*를 위한 수신기 Receiver for a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Terrestrial navigation system/Other means of position fixing* **	_____
6.1 회두각속도계* Rate of turn indicator*	_____
6.2 타각 지시기/조타 스러스트 방향 지시기* Rudder angle indicator/Direction of steering thrust indicator*	_____
7.1 해도/전자해도 표시 및 정보시스템(ECDIS)** Nautical charts/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 (ECDIS)*	_____
7.2 ECDIS의 이중화 Back-up arrangements for ECDIS	_____
7.3 항해용 간행물 Nautical publications	_____
7.4 항해용 간행물의 이중화 Back-up arrangements for nautical publications	_____
8. 탐조등 Search light	_____
9. 주간신호등 Daylight signalling lamp	_____
10. 야시경 Night vision equipment	_____

(10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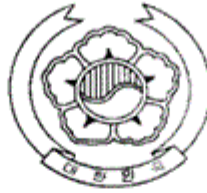
이 기록부는 모든 점에서 정확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is Record is correct in all respects.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_____ 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_____ on the _____ day of _____.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8. 5. 1.>

증서번호 제 _____ 호
Cert. No. _____

고속선운항허가증
PERMIT TO OPERATE HIGH SPEED CRAFT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국제고속선안전코드(해사안전위원회 36(63)) 규정에 의하여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 of the
INTERNATIONAL CODE OF SAFETY FOR HIGH SPEED CRAFT
(Resolution MSC 36(63))

1. 선명
Name of craft: _____
2. 제조자 형식 및 선번
Manufacturer's model and hull number : _____
3. 선박번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 _____
4. IMO 번호
IMO number* : _____
5. 선적항
Port of registry : _____
6. 선박의 분류: 분류 A 여객선 / 분류 B 여객선 / 화물선
Category of craft: Category A passenger craft/category B passenger craft/cargo craft**
7. 운항자명
Name of operator: _____
8. 운항구역 또는 항로
Areas or routes of operation: _____
9. 모항
Base port(s): _____
10. 피항장소부터의 최대거리
Maximum distance from place of refuge: _____
11. 인원
Number of:
 .1 최대허용여객
passengers maximum permitted: _____
 .2 요구되는 선원수
manning scale required: _____
12. 예상되는 최악의 상태
Worst intended conditions: _____
13. 그 밖의 운항의 제한
Other operational restrictions: _____

* 결의 A.600(15) - IMO 선박식별번호 제도에 따름

In accordance with the IMO ship identification number scheme adopted by the Organization by resolution A.600(15).

** 해당되지 아니하는 항목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이 허가장은 위외에 언급한 운항조건이 코드외 1.2.2항으로부터 1.2.7항까지의 일반적 요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This permit confirms that the service mentioned above has been found to be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requirements of 1.2.2 to 1.2.7 of the Code.

이 허가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합니다.

THIS PERMIT is issu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이 허가는 고속선안전증서가 유효한 것을 조건으로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까지 유효합니다.

THIS PERMIT is valid until _____ day of _____,

subject to the High Speed Craft Safety Certificate remaining valid.

이 증서 발급을 위한 검사완료일:

Completion date of the survey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 _____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_____ 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_____ on the _____ day of _____,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

증서번호 제 _____ 호
 Cert. No. _____



고속선안전증서 HIGH SPEED CRAFT SAFETY CERTIFICATE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이 증서에는 설비기록부를 추가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This Certificate shall be supplemented by a Record of Equipment.

「2000 국제고속선안전코드」(해사안전위원회 결의 97(73))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DE OF SAFETY FOR HIGH SPEED CRAFT, 2000
 (Resolution MSC. 97(73))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by _____.

선 명 Name of craft	제조사 형식 및 선번 Manufacturer's mode and hull number	선박번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IMO 번호* IMO number*	선적항 Port of registry	총톤수 Gross tonnage	선박의 운항구역** Sea areas in which ship is certified to operate(paragraph 14.2.1)**

길이방향의 부면심(浮面心, 트림이 생기기 전의 수면선과 트림이 생긴 후의 수면선이 교차하는 점)의 기준선에서
 하방으로 _____ m에 해당하는 설계수선에서 선수흘수 _____ (m) 및 선미흘수 _____ (m)

Design waterline corresponding to a height of _____ below the reference line at the longitudinal centre
 of flotation, and draughts at draught marks of _____(m) forward, _____(m) aft

기준선의 상단은 길이 방향의 부면심(浮面心)에서 (최상층 갑판으로부터 하방으로 _____mm)*** (용골
 하면으로부터 상방으로 _____mm)***에 (표시)*** (규정)*** 되어 있다.

The upper edge of the reference line is (marked)*** (defined)*** at (_____ mm below uppermost deck at
 side)*** (_____ mm above the underside of keel)*** at longitudinal centre of flotation.

분 류: A 류 여객선 / B 류 여객선 / 화물선
 Category: Category A passenger craft/category B passenger craft/cargo craft**

선박의 형식 공기부양선 / 표면효과선 / 수중익선 / 단동선체 / 다동선체 / 그 밖의 선박의 형식(상세히 기재)
 Craft type air-cushion vehicle/surface effect ship/hydrofoil/monohull/multihull/
 other(give details _____)*

용골 거치일 또는 그와 같은 건조 단계일, 또는 주요 개조작업 시작일: _____
 Date on which keel was laid or craft was at a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or on which a major conversion
 was commenced: _____

* 총회 결의서 A.1117(30)에 의해 기구가 채택한 IMO 선박식별번호 체계에 따름
 In accordance with the IMO ship identification number scheme adopted by the Organization by resolution
 A.1117(30).

** A3 해역에서 운항할 수 있도록 인증된 선박의 경우, 인정된 이동식 위성서비스를 괄호 안에 표시할 것
 For a ship certified to operate in sea area A3, indicate the recognized mobile satellite service in brackets.

*법제청하지 않는 것은 지을 것
 Delete as appropriate

(2면)

이 증서는 다음 사항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1. 이 선박은 2000국제고속선안전코드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검사되었음
That the above-mentioned craft has been duly surveyed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de of Safety for High Speed Craft, 2000.
2. 이 검사의 결과, 이 선박의 구조, 설비, 부착물, 무선설비 및 재료와 이들의 상태가 모든 점에서 만족하며 또한 이 선박은 이 코드의 관련 규정에도 적합함
That the survey showed that the structure, equipment, fittings, radio station arrangements and materials of the craft and the condition thereof are in all respects satisfactory and that the craft complies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3. 구명설비가 제공되는 총인원 수 및 다음의 구명설비가 제공되는 인원수 이하임
That the life-saving appliances are provided for a total number of _____ persons and no more as follows : _____
4. 이 선박은 이 코드의 1.11항에 따라 다음의 동등물을 인정하였음:
That, in accordance with 1.11 of the Code, the following equivalents have been granted in respect of the craft:
해당절 _____ 동등한 장비 _____
Paragraph _____ Equivalent Arrangement _____

이 증서는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까지 유효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_____ day of _____.

이 증서 발급을 위한 검사완료일:

Completion date of the survey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 _____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_____ 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_____ on the _____ day of _____.

* 1.8.4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만료일을 기재할 것. 이 만료일자는 1.8.12.1에 따라 수정되지 않는 한 코드의 1.4.3에 정의된 날짜에 해당함

(3면)

검사의 이서 Endorsement for periodical surveys

이 증서는 선박이 이 코드의 1.5항에 따라 요구되는 검사결과 관련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 survey required by 1.5 of the Code, this craft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정기적 검사
Periodic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정기적 검사
Periodic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4면)

제1.8.8항이 적용되는 경우 증서의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일 때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Certificate if valid for less than
5 years where 1.8.8 of the Code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관련 요건에 적합하므로 규칙 제1.8.8항에 따라 _____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is craft complies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de, and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1.8.8 of the Code,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정기검사 완료 후 제1.8.9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이서
Endorsement where the renewal survey has been completed
and 1.8.9 of the Code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규칙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므로 규칙 제1.8.9항에 따라 _____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is craft complies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de and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1.8.9 of the Code,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5면)

제1.8.12항이 적용되는 경우 연차일을 앞당기는 것에 대한 이서
Endorsement for the advancement of the anniversary date
where 1.8.12 of the Code applies

규칙 제1.8.12항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_____ 입니다.

In accordance with 1.8.12 of the Code, the new anniversary date is _____.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규칙 제1.8.12항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_____ 입니다.

In accordance with 1.8.12 of the Code, the new anniversary date is _____.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6면)

고속선안전증서에 대한 설비기록부
Record of equipment for high speed craft safety certificate

이 기록부는 고속선안전증서에 영구적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This Record shall be permanently attached to the
High Speed Craft Safety Certificate.

「2000 국제고속선안전코드」에 따른 설비기록부
RECORD OF EQUIPMENT FOR COMPLIANCE WITH THE
INTERNATIONAL CODE OF SAFETY FOR HIGH SPEED CRAFT, 2000

1. 선박의 세부사항
Particulars of craft

선 명

Name of craft: _____

제조사 형식 및 선번

Manufacturer's model and hull number: _____

선박번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_____

IMO 번호*

IMO Number*: _____

분 류**: A류 여객선 / B류 여객선 / 화물선
Category**: Category A passenger craft/category B passenger craft/cargo craft

선박의 형식: 공기부양선, 표면효과선, 수중익선, 단동선체, 다동선체, 그 밖의 선박의 형식(상세히 기재)
Craft type: air cushion vehicle, surface effect ship, hydrofoil, monohull, multihull,
other (give details _____)

여객정원

Number of passengers for which certified: _____

무선설비 조작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최소인원

Minimum number of persons with required qualifications to operate the radio installations: _____

2. 구명설비의 상세
Details of life-saving appliances

1. 구명설비가 제공되는 총인원 Total number of persons for which life-saving appliances are provided	_____
2. 구명정의 총수 Total number of lifeboats	_____
2.1 구명정에 수용되는 총인원 Total number of persons accommodated by them	_____
2.2 국제구명설비코드 4.5에 적합한 부분폐형 구명정의 수 Number of partially enclosed lifeboats complying with section 4.5 of the LSA Code	_____
2.3 국제구명설비코드 4.6 및 4.7에 적합한 전폐형 구명정의 수 Number of totally enclosed lifeboats complying with section 4.6 and 4.7 of the LSA Code	_____

* 총회 결의서 A.1117(30)에 의해 기구가 채택한 IMO 선박식별번호 체계에 따름
In accordance with the IMO ship identification number scheme adopted by the Organization by resolution A.1117(30).

* 법제처
Delete as appropriate

(7면)

2.4 그 밖의 구명정 Other lifeboats	
2.4.1 수량 Number	
2.4.2 종류 Type	
3. 구조정의 수 Number of rescue boats	
3.1 위의 구명정 총수에 포함된 구조정의 수 Number of boats which are included in the total lifeboats shown above	
4. 국제구명설비 코드 4.1 및 4.3에 부합하는 적절한 진수장치가 있는 구명뗏목 Liferafts complying with sections 4.1 to 4.3 of the LSA Code for which suitable means of launching are provided	
4.1 구명뗏목의 수 Number of liferafts	
4.2 구명뗏목에 수용되는 인원 Number of persons accommodated by them	
5. 개방전도형 구명뗏목(이 코드의 Annex 11) Open reversible liferafts (Annex 11 of the Code)	
5.1 구명뗏목의 수 Number of liferafts	
5.2 구명뗏목에 수용되는 인원 Number of persons accommodated by them	
6. 강하식 탑승장치의 수 Number of Marine Evacuation System (MES)	
6.1 제공되는 인원 Number of persons served by them	
7. 구명부환(救命浮環)의 수 Number of lifebuoys	
8. 구명조끼의 수 Number of lifejackets	
8.1 성인용 Number suitable for adults	
8.2 어린이용 Number suitable for children	
9. 방수복의 수 Number of lifejackets	

3. 항해장비 및 설비의 상세
Details of navigational systems and equipment

1.1	자기 컴퍼스 Magnetic compass	_____
1.2	선수방위 발신기** Transmitting heading device(THD)	_____
1.3	자이로 컴퍼스 Gyro-compass	_____
2.	선속거리계 Speed and distance measuring device	_____
3.	음향측심기 Echo-sounding device	_____
4.1	9 GHz 레이더 9 GHz radar	_____
4.2	제2 레이더(3 GHz/9 GHz*) Second radar(3 GHz/9 GHz*)	_____
4.3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ARPA)/자동추적장치(ATA)* Automatic radar plotting aid(ARPA)/Automatic tracking aid(ATA)	_____
5.	위성항법장치/지상파무선항해장치/기타 위치고정장치*를 위한 수신기 Receiver for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Terrestrial navigation system/Other means of position fixing* **	_____
6.1	회두각속도계* Rate of turn indicator*	_____
6.2	타각 지시기/조타 스러스트 방향 지시기* Rudder angle indicator/Direction of steering thrust indicator*	_____
7.1	해도/전자해도 표시 및 정보시스템(ECDIS)** Nautical charts/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ECDIS)*	_____
7.2	ECDIS의 이중화 Back-up arrangements for ECDIS	_____
7.3	항해용 간행물 Nautical publications	_____
7.4	항해용 간행물의 이중화 Back-up arrangements for publications	_____
8.	탐조등 Search light	_____
9.	주간신호등 Daylight signalling lamp	_____
10.	야시경 Night vision equipment	_____
11.	추진장치의 모드 표시수단 Means to show the mode of the propulsion systems	_____
12.	자동조타장치(자동 조타) Automatic steering aid (Automatic pilot)	_____
13.	레이더 반사기/ 다른 수단* ** Radar reflector/ Other means* **	_____
14.	음향수신장치 Sound reception system	_____
15.	자동식별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AIS)	_____
16.	장거리 식별 및 추적장치 Long-range identification and tracking system	_____
17.	항해자료기록장치(VDR) Voyage data recorder (VDR)	_____

*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 다른 수단이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표시할 것
In case of "other means" they shall be specified.

(9면)

4. 무선설비의 상세
Details of radio facilities

항 목 Item	실제 조치 Actual provision	항 목 Item	실제 조치 Actual provision
1. 기본장치 Primary systems		2. 선박-해안 간 조난 경보 전송을 개시하는 제2차 경보장치 Secondary means of initiating the transmission of ship-to-shore distress alerts	
1.1 VHF 무선설비 VHF radio installation	_____	3. 해상안전정보(MSI), 수색 및 구조 관련 정보의 수신을 위한 설비 Facilities for reception of maritime safety information and search and rescue related information	_____
1.1.1 DSC 인코더 DSC encoder	_____	4.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 Emergency Position Indication Radio Beacon(EPIRB)	_____
1.1.2 DSC 수신기 DSC watch receiver	_____	5. 양방향 VHF 무선전화장비 Two-way VHF radiotelephone apparatus	_____
1.1.3 무선전화 Radiotelephony	_____	6. 레이더 수색 및 구조 트랜스폰더 또는 AIS 수색 및 구조 송신기 Radar SART or AIS-SART	_____
1.2 MF 무선설비 MF radio installation	_____	7. 양방향 현장 무선통신기 121.5MHz 및 123.1MHz Two-way on-scene radiocommunications 121.5 MHz & 123.1 MHz	_____
1.2.1 DSC 인코더 DSC encoder	_____		
1.2.2 DSC 수신기 DSC watch receiver	_____		
1.2.3 무선전화 Radiotelephony	_____		
1.3 MF/HF 무선설비 MF/HF radio installation	_____		
1.3.1 DSC 인코더 DSC encoder	_____		
1.3.2 DSC 수신기 DSC watch receiver	_____		
1.3.3 무선전화 Radiotelephony	_____		
1.4 인정된 이동식 위성 서비스 선박지구국 Recognized mobile satellite service ship earth station	_____		

5. 무선설비의 이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법
Methods used to ensure availability of radio facilities
이 코드의 14.15.6, 14.15.7 및 14.15.8절)
(paragraphs 14.15.6, 14.15.7 and 14.15.8 of the Code)

5.1 설비의 이중화
Duplication of equipment: _____

5.2 육상정비
Shore-based maintenance: _____

5.3 선상정비능력
At-sea maintenance capability: _____

(10면)

이 기록부는 모든 점에서 정확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is Record is correct in all respects.

_____ 년 ____ 월 _____ 일 _____ 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_____ on the _____ day of _____.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3.3.24>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_____



고 속 선 운 항 허 가 증
 PERMIT TO OPERATE HIGH SPEED CRAFT

대 한 민 국
 REPUBLIC OF KOREA

2000 국제고속선 안전코드(해사안전위원회 결의 97(73))에 따라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DE OF SAFETY FOR HIGH SPEED CRAFT, 2000
 (Resolution MSC. 97(73))

1. 선박명
 Name of craft
2. 제조자 형식 및 선번
 Manufacturer's model and hull number
3. 선박번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4. IMO 번호*
 IMO number *
5. 선적항
 Port of registry
6. 선박의 분류 : A류 고속여객선 / B류 고속여객선 / 고속화물선**
 Category of craft : category A passenger craft / category B passenger craft / cargo craft **
7. 운항자명
 Name of operator
8. 운항구역 또는 항로
 Areas or routes of operation :

9. 모 항
 Base port(s) :
10. 피항지부터 최대거리
 Maximum distance from place of refuge

13. 그 밖의 운항의 조건

Other operational restrictions

이 허가는 위외에 언급한 운항조건이 코드 1.2.2부터 1.2.7까지의 일반적 요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This permit confirms that the service mentioned above has been found to be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requirements of 1.2.2 to 1.2.7 of the Code.

이 허가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합니다.

THIS PERMIT is issu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이 허가는 고속선안전증서가 유효한 것을 조건으로년월일까지 유효합니다.

THIS PERMIT is valid untilday of

subject to the High Speed Craft Safety Certificate remaining valid

이 증서 발급을 위한 검사완료일 :

Completion date of the survey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

.....년월일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on the day of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

210mm x 297mm[보존용지(1종) 220g/m²]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6. 17.>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_____

국제방사능핵연료 화물운송 적합증서
INTERNATIONAL CERTIFICATE OF FITNESS
FOR THE CARRIAGE OF INF CARGO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이 증서는 「국제방사능핵연료 화물운송코드(INF CODE)」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 of THE INTERNATIONAL CODE FOR THE SAFE CARRIAGE OF PACKAGED
IRRADIATED NUCLEAR FUEL, PLUTONIUM AND HIGH-LEVEL RADIOACTIVE WASTES ON BOARD SHIPS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y _____

선명 Name of Ship	선박번호 또는 호출부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선적항 Port of Registry	총톤수 Gross tonnage	IMO 번호 IMO Number	INF등급 INF class of ship (1.1.2 of the Code)

이 증서는 다음 사항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 1 이 선박은 코드의 1.3.1항에 따라 검사를 받았으며; 그리고
that the ship has been survey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1.3.1 of the Code; and
- 2 검사 결과 이 선박의 구조, 설비 및 재료는 코드의 적용 요건에 적합함을 확인함
that the survey showed that the structure, equipment, fittings, arrangements and material of the ship complied with the applicable provision of the code.

이 증서는 코드의 1.3.4의 규정을 조건으로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1.3.4 of the Code.

법제처

증서번호 제 _____ 호
Cert. No. _____



특수목적선 안전증서
SPECIAL PURPOSE SHIP SAFETY CERTIFICATE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이 증서에는 설비기록부(양식 SPS)를 첨부해야 합니다.

This Certificate shall be supplemented by a Record of Equipment(Form SPS).

이 증서는 결의서 MSC.266(84)에 의해 채택된 2008 특수목적선안전코드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되었습니다.

Issued in compliance with provisions of the CODE OF SAFETY FOR SPECIAL PURPOSE SHIPS, 2008, as adopted by resolution MSC.266(84)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by _____.

선명 Name of Ship	선박번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선적항 Port of Registry	총톤수 Gross tonnage	IMO 번호* IMO number*

선박의 특수용도

Ship's special purpose _____

운항 허용 해역(「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제4장 제2규칙)**

Sea areas in which ships is certificated to operate(SOLAS regulation IV/2)**

용골 거치일

Date on which keel was laid or ship was at a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or, where applicable, date on which work for a conversion or an alteration or modification of a major character was commenced _____.

이 증서는 다음 사항을 증명함:

THIS IS TO CERTIFY:

1. 이 선박은 코드 제1.6항에 따라 검사를 받았음.

That the ship has been survey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 of regulation 1.6 of the Code.

2. 이 선박의 검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That the survey showed that:

2.1 이 선박은 아래와 같이 코드의 규정에 적합함:

the ship complied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de as regards:

.1 구조, 주기관 및 보조기관, 보일러 및 기타 압력용기들;

the structure, main and auxiliary machinery, boilers and other pressure vessels;

.2 수밀수직구역의 배치 및 상세;

the watertight subdivision arrangements and details;

2.2 이 선박은 방화구조, 화재안전 장치 및 설비, 화재제어도에 관한 코드의 규정에 적합함;

the ship complied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de as regards structural fire protection, fire safety system and appliances and fire control plans;

* 총회 결의서 A.1117(30)에 의해 기구가 채택한 IMO 선박식별번호 체계에 따른

법제처 cordance with IMO ship identification number sch568 adopted by the Organization by resolution A.604/6

** A3 해역 내에서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 인정된 이동식 위성 서비스를 괄호 안에 표시한다.

(2면)

- 2.3 구명설비와 구명정, 구명뗏목, 구조정의 의장품이 코드의 규정에 따라 비치되어 있음;
the life-saving appliance and the equipment of the lifeboats, liferafts and rescue boats were provid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de;
- 2.4 구명줄 발사기가 코드의 규정에 따라 비치되어 있음;
the ship was provided with a line-throwing applianc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de;
- 2.5 이 선박은 무선설비에 관한 코드의 규정에 적합함;
the ship complied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de as regards radio installations;
- 2.6 구명설비용 무선설비의 공급과 기능이 코드의 규정에 적합함;
the provision and the functioning of the radio installations used in life-saving appliance complied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de.
- 2.7 선박용 항해설비, 도선사용 승하선장치 및 해사 간행물에 관한 코드의 규정에 적합함;
the ship complied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de as regards shipborne navigational equipment, means of embarkation for pilots and nautical publications;
- 2.8 이 코드 및 현행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의 규정에 따라 음향신호와 조난신호의 수단, 등화 및 형상물이 비치되어 있음;
the ship was provided with lights, shapes, means of making sound signals and distress signal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de and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in Force;
- 2.9 그 밖의 모든 점에서 이 선박은 코드의 관련 규정에 적합함.
in all other respects the ship complied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3. 면제증서가 발행되었음/ 발행되지 않았음.*
That an Exemption Certificate has/ has not* been issued.
4. 이 선박은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에 대한 국제협약」(개정 포함)에 따라 발행된 증서를 소지하고/ 소지하지 않고 있음.*
That the ship has/has not* been provided with Certificates issued under SOLAS, as amended.

이 증서는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 유효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_____ day of _____ .

이 증서 발급을 위한 검사완료일:

Completion date of the survey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 : _____

(3면)

본 증서 제2.1항에 해당하는 선체, 기관 및 설비의 연차검사에 대한 이서
 ENDORSEMENT FOR ANNUAL SURVEYS RELATING TO HULL, MACHINERY
 AND EQUIPMENT REFERRED TO IN SECTION 2.1 OF THIS CERTIFICATE

이 증서는 코드 제1.6항에 따른 검사결과 선박이 코드의 관련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 survey required by 1.6 of the Code,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연 차 검 사
 Annu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연 차 검 사
 Annu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연 차 검 사
 Annu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4면)

본 증서 2.2, 2.3, 2.4, 2.6, 2.8 및 2.9항에 해당하는 구명설비 및
그 밖의 설비의 연차검사 및 정기적 검사에 대한 이서
ENDORSEMENT FOR ANNUAL AND PERIODICAL SURVEYS RELATING TO
LIFE-SAVING APPLIANCES AND OTHER EQUIPMENT REFERRED TO IN
SECTION 2.2, 2.3, 2.4, 2.6, 2.7, 2.8 AND 2.9 OF THIS CERTIFICATE

이 증서는 코드 제1.6항에 따른 검사결과, 선박이 코드의 관련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 survey required by 1.6 of the Code,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연 차 검 사
Annu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연차/정기적* 검사
Annual/Periodic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연차/정기적* 검사
Annual/Periodic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5면)

본 증서 2.5항에 해당하는 무선설비의 정기적 검사에 대한 이서
 ENDORSEMENT FOR PERIODICAL SURVEYS RELATING TO RADIO
 INSTALLATIONS REFERRED TO IN SECTION 2.5 OF THIS CERTIFICATE

이 증서는 코드 제1.6항에 따른 검사결과, 선박이 코드의 관련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 survey required by 1.6 of the Code,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정기적 검사
 Periodic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정기적 검사
 Periodic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정기적 검사
 Periodic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연 차 검 사
 Annu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6면)

특수목적선안전증서에 대한 설비기록부(양식 SPS)

Record of Equipment for the Special Purpose Ship Safety Certificate(Form SPS)

이 기록부는 특수목적선안전증서에 영구적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This Record Shall be permanently attached to the Special Purpose Ship Safety Certificate.

1. 선박의 세부사항
Particular of ship선박명
Name of ship _____선박번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_____특수용도 승선자 수(여객 포함)
Number of special personnel on board(including passengers) for which certified _____무선설비 조작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최소 승선인원
Minimum number of persons on board with required qualifications to operate the radio installations _____2. 구명설비의 상세
Details of life-saving appliances

1. 구명설비가 제공되는 총인원 Total number of persons for which life-saving appliances are provided		
	좌현 Port Side	우현 Starboard Side
2. 구명정 총수 Total number of lifeboats		
2.1 구명정에 수용되는 인원 Total number of persons accommodated by them		
2.2 부분폐형 구명정의 수(제3장 제31규칙 및 LSA 코드, 4.5절) Number of partially enclosed lifeboats(regulation III/31 and LSA Code, section 4.5)		
2.3 전폐형의 구명정의 수(제3장 제31규칙 및 LSA 코드, 4.6절) Number of totally enclosed lifeboats(regulation III/31 and LSA Code, section 4.6)		
2.4 그 밖의 구명정 Other lifeboats		
2.4.1 구명정의 수 Number		
2.4.2 형식 Type		
3. 모터 구명정의 수(위의 구명정 총수에 포함) Number of motor lifeboats(included in the total lifeboats shown above)		
3.1 탐조등이 장치된 구명정의 수 Number of lifeboats fitted with searchlights		
4. 구조정의 수 Number of rescue boats		
4.1 위의 구명정 총수에 포함되는 구조정의 수 Number of boats which are included in the total lifeboats shown above		

(7면)

5. 구명뗏목 Liferafts	
5.1 승인된 진수장치가 필요한 것 Those for which approved launching appliance are required	
5.1.1 구명뗏목의 수 Number of liferafts	
5.1.2 수용인원의 수 Number of persons accommodated by them	
5.2 승인된 진수장치가 필요 없는 것 Those for which approved launching appliance are not required	
5.2.1 구명뗏목의 수 Number of liferafts	
5.2.2 수용인원의 수 Number of persons accommodated by them	
6. 구명부환(救命浮環)의 수 Number of lifebuoys	
7. 구명조끼의 수 Number of lifejackets	
8. 방수복의 수 Number of immersion suits	
9. 보온기구의 수* Number of thermal protective aids*	

* LSA코드 제4.1.5.1.24항, 제4.4.8.31항 및 제5.1.2.2.13항에서 요구되는 것은 제외함
Excluding those required by the LSA Code, paragraphs 4.1.5.1.24, 4.4.8.31 and 5.1.2.2.13.

(8면)

3. 무선설비의 상세
Details of radio facilities

항목 Item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항목 Item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1 기본장치 Primary systems		3 해상안전정보 및 수색·구조 관련 정보 수신을 위한 설비 Facilities for reception of MSI and search and rescue related information	
1.1 VHF 무선설비 VHF radio installation		4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 Emergency Position Indication Radio Beacon(EPIRB)	
1.1.1 디지털선택호출장치 인코더 DSC encoder		5 양방향 VHF 무선전화장비 Two-way VHF radiotelephone apparatus	
1.1.2 디지털선택호출장치 수신기 DSC watch receiver		5.1 휴대용 양방향 VHF 무선전화장비 Portable two-way VHF radiotelephone apparatus	
1.1.3 무선전화 Radiotelephony		5.2 생존정에 장착된 쌍방향 VHF 무선전화 장비 Two-way VHF radiotelephone apparatus fitted in survival craft	
1.2 MF 무선설비 MF radio installation		6 선박의 수색 및 구조 위치확인장치 Ship's search and rescue locating device	
1.2.1 디지털선택호출장치 인코더 DSC encoder		6.1 생존정에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비치된 레이더 수색 및 구조 트랜스폰더 Radar search and rescue transponder (SART) stowed for rapid placement in survival craft	
1.2.2 디지털선택호출장치 수신기 DSC watch receiver		6.2 생존정에 비치된 레이더 수색 및 구조 트랜스폰더 Radar search and rescue transponder (SART) stowed for in survival craft	
1.2.3 무선전화 Radiotelephony		6.3 생존정에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비치된 AIS 수색 및 구조 송신기 AIS search and rescue transmitters (AIS-SART) stowed for rapid placement in survival craft	
1.3 MF/HF 무선설비 MF/HF radio installation			
1.3.1 디지털선택호출장치 인코더 DSC encoder			
1.3.2 디지털선택호출장치 수신기 DSC watch receiver			
1.3.3 무선전화 Radiotelephony			
1.4 인정된 이동식 위성 서비스 선박지구국 Recognized mobile satellite service ship earth station			
2 선박-해안 간 조난 정보 전송 선박-해안 간 조난 정보 전송 선박-해안 간 조난 정보 전송			

(9면)

5. 항해장비 및 설비의 상세

Details of navigational systems and equipment

항목 Item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항목 Item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1.1 기준 자기 컴퍼스* Standard magnetic compass*		3.5 자동추적장치* Automatic tracking aid*	
1.2 예비의 자기 컴퍼스* Spare magnetic compass*		3.6 제2 자동추적장치* Second automatic tracking aid*	
1.3 자이로 컴퍼스* Gyro compass*		3.7 플로팅설비* Electronic plotting aid*	
1.4 자이로 컴퍼스 선수 리피터* Gyro compass heading repeater*		4 자동식별장치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AIS)	
1.5 자이로 컴퍼스 방위 리피터* Gyro compass bearing repeater*		5.1 항해자료기록장치** Voyage data recorder(VDR)**	
1.6 선수 또는 항적 제어장치* Heading or track control system*		5.2 간이항해자료기록장치** Simplified Voyage data recorder (S-VDR)**	
1.7 방위환 또는 컴퍼스 방위장치* Pelorus or compass bearing device*		6.1 선속거리계(대수속력)* Speed and distance measuring device(through the water)*	
1.8 선수방위 수정 장치 Means of correcting heading and bearings		6.2 선속거리계(대지속력)* Speed and distance measuring device(over the ground in the forward and athwartship direction)*	
1.9 선수방위 발신기* Transmitting heading device(THD)*		6.3 음향측심기* Echo sounding device*	
2.1 해도/전자해도 표시 및 정보 시스템 (ECDIS)** Nautical chart/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 (ECDIS)**		7.1 타각지시기 등* Rudder, propeller, thrust, pitch and operational mode indicator*	
2.2 ECDIS의 이중화 Back up arrangement for ECDIS		7.2 회두각 속도계* Rate of turn indicator*	
2.3 항해용간행물 Nautical publications		8. 음향수신장치* Sound reception system*	
2.4 전자 항해용간행물의 이중화 Back-up arrangements for electronic nautical publications		9. 비상조타실의 전화* Telephone to emergency steering position*	
3.1 위성항법장치/지상파무선항해			

(10면)

이 기록부는 모든 점에서 정확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is Record is correct in all respects.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_____ on the _____ day of _____.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글 및 영문)

선 급 법 인 명(한글 및 영문)

210mm x 297mm[보존용지(1종) 220g/m²]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9. 8. 20.>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_____국제만재홀수선증서
INTERNATIONAL LOAD LINE CERTIFICATE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1966년 만재홀수선에 관한 국제협약」 및 같은 협약에 관한 1988년 의정서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Load Lines, 1966, as modified by the Protocol of 1988 relating thereto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y.

선명 Name of Ship	선박번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선적항 Port of Registry	제2조 (8)에 정의된 길이(L) Length(L) as defined in Article 2(8)	IMO 번호 IMO Number

지정된 건현
Freeboard assigned as:* ☐ 신선 A new ship
* ☐ 현존선 An existing ship선박의 형식
Type of ship:

* ☐ 'A'형 'B'형 건현이 감소된 건현이 증가된 freeboard	Type 'A' 'B' Type 'B' with reduced freeboard Type 'B' with increased freeboard
--	--

갑판선으로부터의 건현
Freeboard from deck line열대 Tropical _____ 밀리미터 mm above(S)
하계 Summer _____ 밀리미터 mm (S)동계 Winter _____ 밀리미터 mm (W)
동기북대서양 Winter North Atlantic _____ 밀리미터 mm below(S)

목재열대 Timber Tropical _____ 밀리미터 mm above(LS)

목재하계 Timber Summer _____ 밀리미터 mm (LS)

목재동기북대서양 Timber Winter North Atlantic _____ 밀리미터 mm below(LS)
_____ 밀리미터 mm below(LS)

목재 건현 이외의 모든 건현에 대하여 담수에 대한 여유 밀리미터 목재 건현에 대하여 담수에 대한 여유 밀리미터

Allowance for fresh water for all freeboards other than timber _____ mm For timber freeboards _____ mm

위에 적은 건현을 측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갑판선의 상연은 선측에 있어서 _____ 갑판의 _____ 방에 있음.

만재홀수선
Load Line
밀리미터 mm (T) (S)의 상방원표의 중심을 지나는 선의 상연
Upper edge of line through centre of ring
(S)의 하방 _____ 밀리미터 mm below(S)
밀리미터 mm (WNA) (S)의 하방

밀리미터 mm (LT) (LS)의 상방

(S)의 상방 _____ 밀리미터 mm above(S)
밀리미터 mm (LW) (LS)의 하방

밀리미터 mm (LWNA) (LS)의 하방

이 증서는 다음 사항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1. 이 선박은 이 협약의 제14조의 요건에 따라 검사되었음

That the ship has been survey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14 of the Convention.

2. 검사 결과 협약에 따라 건현이 지정되어 있고 위의 만재홀수선이 표시되어 있음

That the survey showed that the freeboards have been assigned and load lines shown above have been marked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이 증서는 위의 협약의 제14조(1)(c)에 따른 연차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____년 ____월 ____일까지 유효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____ day of ____ subject to annual survey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4(1)(c) of the Convention.

이 증서 발급을 위한 검사완료일:

Completion date of the survey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 _____

____년 ____월 ____일 _____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_____ on the _____ day of _____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인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 글 및 영 문)

선 급 법 인 명(한 글 및 영 문)

검 사 의 확 인

ENDORSEMENT FOR ANNUAL SURVEYS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 제14조 (1)(c)항에 요구되는 연차 검사의 결과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n annual survey required by article 14(1)(c) of the Convention,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연 차 검 사

Annual Survey

법제처

서 명

Signed: _____

590

국가법령정보센터

연 차 검 사
Annu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연 차 검 사
Annu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제19조 (8)(c)항에 의한 연차검사

Annual survey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8)(c)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 제19조 (8)(c)항에 의한 검사 결과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 survey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8)(c) of the Convention,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정기검사가 완료되고 제19조 (4)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이서

Endorsement where the renewal survey has been completed and article 19(4)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므로 협약 제19조 (4)항에 따라 _____ 까
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nd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4)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제19조 (5)항 또는 제19조 (6)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검사예정항에
도착 시까지 또는 유예기간 동안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validity of the certificate until reaching
the port of survey or for a period of grace where article 19(5) or 19(6) applies

이 증서는 협약 제19조 (5)항·/제19조 (6)항·에 따라 _____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5)·/19(6)·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협약 제19조 (8)항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_____ 이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8) of the Convention the new anniversary date is _____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2서식] <신설 2025. 2. 27.>

증서번호 제 _____ 호
Cert. No. _____

산업인력안전증서 INDUSTRIAL PERSONNEL SAFETY CERTIFICATE

(8쪽 중 1쪽)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이 증서에는 설비기록부(양식 IP)를 추가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This Certificate shall be supplemented by a Record of Equipment for the Industrial Personnel Safety Certificate(Form IP).

이 증서는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as amend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by _____.

선명 Name of Ship	선박번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선적항 Port of Registry	총톤수 Gross tonnage	IMO 번호* IMO number*

용골 거치일

Date [dd/mm/yyyy] on which keel was laid or ship was at a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or, where applicable, date on which work for a conversion or an alteration or modification of a major character was commenced

이 증서는 다음 사항을 증명함:

THIS IS TO CERTIFY:

1. ☐ 아래 내용이 해당할 경우, 네모 칸에 체크
☐ check box, if applicable

이 선박은 협약 제15장 제3.1규칙 또는 제3.4규칙을 적용받는 선박으로서 IP Code 제1장 제3규칙에 따라 검사되었음

That the ship has been survey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section 1/3 of the International Code of Safety for Ships Carrying Industrial Personnel as a ship to which regulation XV/3.1 or 3.4 of the Convention apply.

1.1 이 선박의 검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1.1 That the survey showed that:

- .1 구조, 설비, 부착물 및 재료와 이들의 상태는 모든 점에서 적합하고 이 선박은 코드의 관련 규정을 준수함

.1 the structure, equipment, fittings and materials of the ship and the condition thereof are in all respects satisfactory and that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and

* 총회 결의서 A.1117(30)에 의해 기구가 채택한 IMO 선박식별번호 체계에 따름

In accordance with IMO Ship Identification Number Scheme adopted by the Organization by resolution A1117(30).

(8쪽 중 2쪽)

- .2 인력의 이동을 위한 장비 및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면, 이들의 상태는 모든 점에서 적합하고 이 선박은 코드 제3장 제2규칙을 준수하고 있음
 .2 if fitted, the personnel transfer appliances and arrangement and the condition thereof are in all respects satisfactory and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regulation III/2 of the Code.

2. ☐ 아래 내용이 해당할 경우, 네모 칸에 체크

☐ check box, if applicable

이 선박은 협약 제15장 제3.2규칙 또는 제3.3규칙을 적용받는 선박으로서 IP Code 제1장 제3규칙에 따라 검사되었음

That the ship has been survey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section 1/3 of the International Code of Safety for Ships Carrying Industrial Personnel as a ship to which regulation XV/3.2 or XV/3.3 of the Convention apply.

2.1 이 선박의 검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2.1 That the survey showed that:

- .1 구명설비, 구명정, 구명뗏목 및 구조정의 의장품을 이 코드 제4장 제7규칙 또는 제5장 제7규칙의 해당 요건에 따라 비치하고 있음
 .1 the life-saving appliances and the equipment of the lifeboats, liferafts and rescue boats were provided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V/7 or V/7 of the Code, as applicable;
- .2 코드 제4장 제8규칙 또는 제5장 제8규칙의 해당 요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위험물을 운송하는 것을 승인함
 .2 the ship, if permitted to carry dangerous goods, complies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regulation IV/8 or V/8 of the Code, as applicable; and
- .3 인력의 이동을 위한 장비 및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면, 이들의 상태는 모든 점에서 적합하고 이 선박은 코드 제3항 제2규칙(2.1.7항 제외)을 준수함
 .3 if fitted, the personnel transfer appliances and arrangement and the condition thereof are in all respects satisfactory and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regulation III/2(except for paragraph 2.1.7) of the Code.

3. 이 증서는 최대승선인원 60명을 초과하는 선박이 독성제품, 저인화점제품 또는 산성 제품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음

This certificate is not valid for the carriage of toxic products, low-flashpoint products or acids when the total number of persons on board exceeds 60.

이 증서의 유효일 _____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_____

이 증서 발급을 위한 검사 완료: _____

Completion date of the survey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 (dd/mm/yyyy): _____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_____ 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_____ on the _____ day of _____.

해양수산부장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글 및 영문)
 선 급 법 인 명(한글 및 영문)

직인

연차검사, 정기적검사 및 중간검사에 대한 이서
ENDORSEMENT FOR ANNUAL, PERIODICAL AND INTERMEDIATE SURVEYS

이 증서는 코드 제1장 제3규칙에 따른 검사결과 선박이 코드의 관련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 survey required by 1/3 of the Code,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연차검사/정기적검사*

Annual/Periodical Survey*: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연차검사/정기적검사/중간검사*

Annual/Periodical/Intermediate Survey*: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연차검사/정기적검사/중간검사*

Annual/Periodical/Intermediate Survey*: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연차검사/정기적검사*

Annual/Periodical Survey*: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 해당되지 않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협약 제1장 제14규칙 (C)항 또는 2000 고속선 코드 1.8.8항이 적용되는 경우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일 때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CERTIFICATE IF VALID FOR LESS THAN FIVE YEARS WHERE REGULATION
1 /14(C) OF THE CONVENTION OR 1.8.8 OF THE 2000 HSC CODE APPLIES

이 증서는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며 협약 제1장 제14규칙 (c)항 또는 2000 고속선
코드 1.8.8항에 따라 _____까지 유효함을 증명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nd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 /14(c) of the Convention* or 1.8.8 of the 2000 HSC Code*,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

_____.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정기검사 완료 후 협약 제1장 제14규칙 (D)항 또는 2000 고속선 코드 1.8.9
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이서

ENDORSEMENT WHERE THE RENEWAL SURVEY HAS BEEN COMPLETED AND REGULATION
1 /14(D) OF THE CONVENTION OR 1.8.9 OF THE 2000 HSC CODE APPLIES

이 증서는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며 협약 제1장 제14규칙 (d)항 또는 2000 고속선
코드 1.8.9항에 따라 _____까지 유효함을 증명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nd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 /14(d) of the Convention* or 1.8.9 of the 2000 HSC Code*,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

_____.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협약 제1장 제14규칙 (E)항, 제1장 제14규칙 (F)항 또는 2000 고속선 코드 1.8.10항이 적용되는 경우 검사예정항 도착 시까지 또는 유예기간까지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VALIDITY OF THE CERTIFICATE UNTIL REACHING THE PORT OF SURVEY OR FOR A PERIOD OF GRACE WHERE REGULATION 1/14(E) OR 1/14(F) OF THE CONVENTION OR 1.8.10 OF THE 2000 HSC CODE APPLIES

이 증서는 협약 제1장 제14규칙 (e)항, 제1장 제14규칙 (f)항 또는 2000 고속선 코드 1.8.10항에 따라 _____까지 유효함을 증명합니다.

The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14(e)/1/14(f) of the Convention or 1.8.10 of the 2000 HSC Code,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협약 제1장 제14규칙 (H)항 또는 2000 고속선 코드 1.8.12항이 적용되는 경우 연차일을 앞당기는 것에 대한 이서

ENDORSEMENT FOR ADVANCEMENT OF ANNIVERSARY DATE WHERE REGULATION 1/14(H) OF THE CONVENTION OR 1.8.12 OF THE 2000 HSC CODE APPLIES

협약 제1장 제14규칙 (h)항 또는 2000 고속선 코드 1.8.12항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_____입니다.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14(h) of the Convention* or 1.8.12 of the 2000 HSC Code*, the new anniversary date is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산업인력 안전증서에 대한 설비기록부(양식 IP)
Record of Equipment for the Industrial Personnel Safety Certificate (Form IP)

이 기록부는 산업인력 안전증서에 영구적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This Record should be permanently attached to the Industrial Personnel Safety Certificate.

국제산업인력안전코드에 따른 설비기록부
RECORD OF EQUIPMENT FOR COMPLIANCE WITH THE INTERNATIONAL CODE OF SAFETY FOR SHIPS CARRYING
INDUSTRIAL PERSONNEL

1. 선박의 개요
Particular of ship

선명
Name of ship _____

선박번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_____

최대승선인원
Total number of persons on board for which certified _____

2. 구명설비의 상세
Details of life-saving appliances

1. 구명설비가 제공되는 총인원 Total number of persons for which life-saving appliances are provided			
		좌현 Port Side	우현 Starboard Side
2. 구명정 총수 Total number of lifeboats			
2.1 구명정에 수용되는 인원 Total number of persons accommodated by them			
2.2 부분폐형 구명정의 수 (SOLAS 제3장 제21규칙 또는 제31규칙 또는 고속선 코드 8.10의 해당 규정 및 LSA 코드 4.5) Number of partially enclosed lifeboats(SOLAS regulation III/21 or III/31, or 8.10 of the HSC Code, as applicable, and LSA Code, section 4.5)			
2.3 자체복원식 부분폐형 구명정의 수 (SOLAS 제3장 제21규칙 또는 제31규칙 또는 고속선 코드 8.10의 해당 규정 및 LSA 코드 4.5) Number of self-righting partially enclosed lifeboats (SOLAS regulation III/21 or III/31, or 8.10 of the HSC Code, as applicable, and LSA Code, section 4.5)			
2.4 전폐형 구명정의 수 (SOLAS 제3장 제21규칙 또는 제31규칙 또는 고속선 코드 8.10의 해당 규정 및 LSA 코드 4.6) Number of totally enclosed lifeboats (SOLAS regulation III/21 or III/31, or 8.10 of the HSC Code, as applicable, and LSA Code, section 4.6)			

(8쪽 중 7쪽)

2.5 그 밖의 구명정 Other lifeboats		
2.5.1 구명정의 수 Number		
2.5.2 종류 Type		
3. 모터 구명정의 수 (위의 구명정 총수에 포함) Number of motor lifeboats (included in the total lifeboats shown above)		
3.1 탐조등이 장치된 구명정의 수 Number of lifeboats fitted with searchlights		
4. 구조정의 수 Number of rescue boats		
4.1 위의 구명정 총수에 포함된 구조정의 수 Number of boats which are included in the total lifeboats shown above		
5. 구명뗏목 Liferafts		
5.1 승인된 진수장치가 필요한 것 Those for which approved launching appliances are required		
5.1.1 구명뗏목의 수 Number of liferafts		
5.1.2 수용인원 Number of persons accommodated by them		
5.2 승인된 진수장치가 필요하지 않은 것 Those for which approved launching appliances are not required		
5.2.1 구명뗏목의 수 Number of liferafts		
5.2.2 수용인원 Number of persons accommodated by them		
6. 강하식 탑승장치의 수 Number of marine evacuation systems (MES)		
6.1 수용인원 Persons accommodated by them		
7. 구명부기(救命浮器) Buoyant apparatus		
7.1 구명부기의 수 Number of apparatuses		
7.2 구명부기를 사용하는 전체 인원수 Number of persons capable of being supported		
8. 구명부환(救命浮環)의 수 Number of lifebuoys		
9. 구명조끼의 수 Number of lifejackets (total)		
9.1 성인용 구명조끼의 수 Number of adult lifejackets		
9.2 어린이용 구명조끼의 수 Number of child lifejackets		

(8쪽 중 8쪽)

10. 방수복 Immersion suits	
10.1 총 수량 Total number	
11. 보온기구의 수* Number of thermal protective aids*	

이 기록부는 모든 점에서 정확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is Record is correct in all respects.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_____ on the _____ day of _____.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글 및 영문)
선 급 법 인 명(한글 및 영문)

직인

* LSA코드 제 4.1.5.1.24항, 제4.4.8.31항 및 제5.1.2.2.13항에서 요구되는 것은 제외함
 Excluding those required by the LSA Code, paragraphs 4.1.5.1.24, 4.4.8.31 and 5.1.2.2.13.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9. 8. 20.>

증서번호 제 _____ 호
Cert. No. _____면 제 증 서
EXEMPTION CERTIFICATE대 한 민 국
REPUBLIC OF KOREA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및 같은 협약에 관한 1988년 의정서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as modified by the Protocol of 1988 relating thereto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y _____

선 명 Name of Ship	선 박 번 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선 적 항 Port of Registry	총 톤 수 Gross Tonnage	IMO 번호 IMO Number

이 증서는 다음 사항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이 선박은 협약의 _____ 규칙에 따라 부여된 권한에 의하여 협약의 _____ 요건으로부터 면제됨
That the ship is, under the authority conferred by regulation _____ of the Convention,
exempted from the requirement of _____ of the
Convention.면제증서가 허용되는 조건:
Conditions, if any, on which the Exemption Certificate is granted:

_____면제증서가 허용되는 항해:
Voyages, if any, for which the Exemption Certificate is granted:

제I장 제14규칙 (c)항이 적용되는 경우 증서의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일 때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certificate if valid for less
than 5 years where regulation I/14(c) applies

이 증서는 협약 제I장 제14규칙 (c)항에 따라, 이 증서를 첨부한 _____증서가 유효한 것을 조건으로
_____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c)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subject to the _____Certificate, to which this certificate is attached, remaining valid.

서 명

Signed :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정기검사 완료 후 제I장 제14규칙 (d)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이서
Endorsement where the renewal survey has been completed and regulation I/14(d) applies

이 증서는 협약 제I장 제14규칙 (d)항에 따라, 이 증서를 첨부한 _____증서가 유효한 것을 조건으로
_____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d)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subject to the _____certificate, to which this certificate is attached,
remaining valid.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제I장 제14규칙 (e)항 또는 (f)항이 적용되는 경우 검사 예정 항에 도착 시까지
또는 유효기간까지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validity of the certificate until reaching the port of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9. 8. 20.>

증서번호 제 _____ 호
Cert. No. _____

국제 만재흘수선면제증서
INTERNATIONAL LOAD LINE EXEMPTION CERTIFICATE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1966년 만재흘수선에 관한 국제협약」 및 같은 협약에 관한 1988년 의정서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Load Lines, 1966, as modified by the Protocol of 1988 relating thereto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y _____.

선명 Name of Ship	선박번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선적항 Port of Registry	제2조 (8)에 정의된 길이(L) Length(L) as defined in Article 2(8)	IMO 번호 IMO Number

이 증서는 다음 사항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이 선박은 위의 협약의 제6조 (2)항+/제6조 (4)항+에 의하여 권한에 의하여 협약의 규정으로부터 면제됨

That the ship is exempted from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under the authority conferred by article 6(2)+/6(4)+ of the Convention referred to above.

제6조(2)항에 의하여 선박에 대한 그 적용이 면제되는 협약의 규정은 다음과 같음: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from which the ship is exempted under Article 6(2) are:

제6조(4)항에 의하여 면제가 부여된 항해는:

The voyage for which exemption is granted under Article 6(4) is:

_____부터 _____까지로 합니다.

from _____ to _____

제6조(2)항 또는 제6조(4)항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의 조건:

Conditions, if any, on which the exemption is granted under either Article 6(2) or Article 6(4):

검 사 의 확 인

Endorsement for annual surveys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 제14조 (1)(c)항에 따라 요구되는 연차 검사의 결과 면제되는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n annual survey required by article 14(1)(c) of the Convention,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is exemption was granted.

연 차 검 사
Annu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연 차 검 사
Annu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연 차 검 사
Annu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제19조 (8)(c)항에 따른 연차 검사
Annual survey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8)(c)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 제19조 (8)(c)항에 의한 검사 결과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 survey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8)(c) of the Convention,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자

Date: _____

제19조 (3)항이 적용되는 경우 증서의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일 때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certificate if valid for less than 5 years where article 19(3)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므로 협약 제19조 (3)항에 따라 _____까지 유효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nd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3)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자

Date: _____

제19조 (5)항 또는 제19조 (6)항이 적용되는 경우 검사 예정 항에
도착 시까지 또는 유예기간 동안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validity of the certificate until reaching the port of
survey

or for a period of grace where article 19(5) or 19(6) applies

이 증서는 협약의 제19조 (5)항·/제19조 (6)항·에 따라서 _____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5)·/19(6)·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제19조 (8)항이 적용되는 경우 연차일을 앞당기는 것에 대한 이서

Endorsement for advancement of anniversary date where article 19(8) applies

협약의 제19조 (8)항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_____이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8) of the Convention the new anniversary date is _____.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 _____

날 짜

Date: _____

(알 쪽)

국 제 협 약 검 사 신 청 서

※ □는 해당란에 √표시하며, 뒤 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검 사 종 류	☐ 여객선안전검사(PS) ☐ 화물선안전무선검사(SR) ☐ 화물선안전구조검사(SC) ☐ 화물선안전설비검사(SE) ☐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 적합검사(IGC) ☐ 액화가스산적운송 적합검사(GC) ☐ 국제위험화학품산적운송 적합검사(IBC) ☐ 위험화학품산적운송 적합검사(BCH) ☐ 위험물운송 적합검사(CDG) ☐ 국제만재흡수선검사(ILL) ☐ 그 밖의 검사()
-----------	---

소 유 자	② 성 명 (대표자명)	
	③ 주 소	(전화:)
	④ 상 호	(전송:) (전자우편:)

⑤ 선 명	⑥ 선 박 번 호
-------	-----------

⑦ 수검요청일자	⑧ 수검장소
----------	--------

(9) 비	고
-------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박의 국제협약검사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⑩ 선 적 항	⑪ 선 종	☐ 기선 ☐ 범선 ☐ 부선 ☐ 기타
---------	-------	---

⑫ 선	질	☐ 강	☐ 목	☐ FRP	☐ 기타	⑬ 용	도
-----	---	----------------------------	----------------------------	------------------------------	-----------------------------	-----	---

⑭ 총 톤 수	톤	⑮ 선 박 길 이	미터
---------	---	-----------	----

⑬ 추진기관	[kW]	[PS]	대	⑭ 무선설비	
	[kW]	[PS]	대		

⑮ 항 해 구역	법제처 구역	626
----------	--------	-----

국제협약검사 신청안내

(뒤 쪽)

제출하는 곳	대행검사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급법인)	처리부서	지역별 사무소
수 수 료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처리기간	25일
유 의 사 항	☐ 벌칙 규정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협약검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국제협약검사의 종류 및 그 시기 ○ 최초검사: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 ○ 정기검사: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중간검사: 국제협약검사증서의 두번째 검사기준일 또는 세번째 검사기준일 전후의 3개월 이내 ○ 연차검사: 국제협약검사증서의 매 검사기준일 전후의 3개월 이내(중간검사를 받는 연도의 검사기준일은 제외한다) ○ 임시검사: 선박의 시설 또는 무선설비에 대하여 개조 또는 수리를 행할 때, 국제협약검사증서의 기재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그 밖에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검사 ☐ 국제협약검사증서의 효력정지 ○ 선박의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또는 임시항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위험물을 적재·운송하거나 저장하려는 자는 그 방법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유조선·산적화물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액화가스산적운송선은 제외한다)의 각화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별지 제31호서식]

도 면 승 인(변 경) 신 청 서				처리기간
※ ☐ 는 해당 란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25일
① 도면의 종류	☐ 건조검사 관련도면 ☐ 별도건조검사 관련도면 ☐ 정기검사 관련도면 ☐ 임시검사 관련도면 ☐ 예비검사 관련도면 ☐ 만재흡수선 관련도면 ☐ 복원성자료 ☐ 화물적재고박지침서			
신 청 인	② 성 명 (대표자명)			
	③ 주 소	(전화:)		
	④ 상 호	(전송:) (전자우편:)		
선 박	⑤ 선 명	⑥ 선박번호 또는 건조번호		
	⑦ 용 도	⑧ 총 톤 수		
	⑨ 선박길이	⑩ 선 질		
선박용 물건	⑪ 품 명	⑫ 규 격		
	⑬ 형 식			
⑭ 비 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면승인(변경)을 받기 위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 <개정 2026. 8. 25.>

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 청 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팩스)	
	주소		
내 용	측정장비 명칭 및 보유대수		
	두께측정을 담당할 조직의 인력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선체 두께 측정 업무에 관한 업무규정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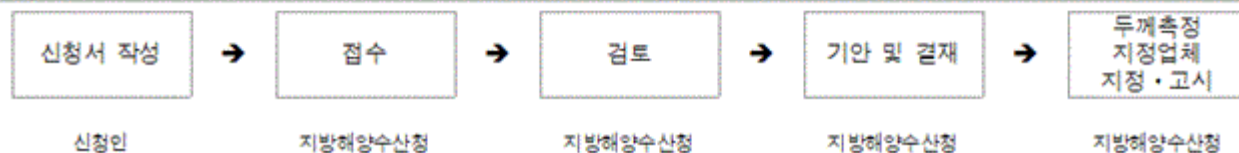
신청인(대표자)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측정 업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됩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체두께를 측정한 경우
- 3. 두께 측정지정업체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 4. 「선박안전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선체두께 측정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6. 「선박안전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처리절차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8. 11. 20.>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알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소유자	성명(대표자명)	상호(법인명)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팩스번호)
	주소		
선박	선박의 명칭	선박번호	
	선적항	선질	[]강(鋼) []목(木) []강화플라스틱(FRP) []그 밖의 선질
	총톤수	용도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박구조 등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 또는 개조사항을 표시한 도면(「선박안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도면을 말합니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량 및 중심 위치의 변화량을 산출한 계산서 및 「선박안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복원성자료	수수료
	나. 그 밖에 복원성 유지 의무 선박의 경우: 변경 또는 개조사항을 표시한 「선박안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복원성자료	없음

유의사항

□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조 등의 변경범위

- 선박의 길이·너비·깊이의 변경 또는 「선박안전법」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선박시설의 기준 등의 적용이 다르게 되도록 하는 선박의 용도 변경
- 선박의 추진용으로 사용되는 원동기의 변경 또는 개조(동일한 형식 및 출력의 원동기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
- 조타설비의 변경 또는 개조
- 구명팩목, 구명정 또는 강하식탈승장치의 변경 또는 개조(제작일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설비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
- 고정식 가스·포말·가압분무·불활성가스 소화장치 및 스프링롤러 소화설비의 변경 또는 개조
- 여객선 거주설비의 변경 또는 개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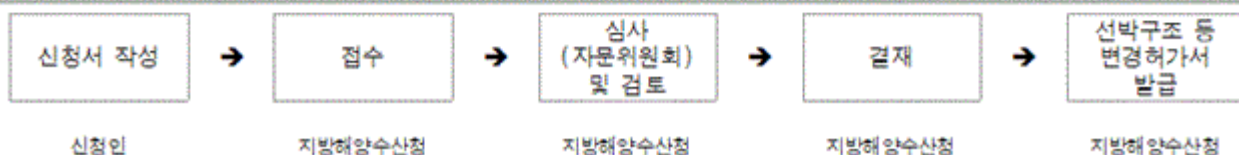
□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의 길이·너비·깊이·용도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개조한 선박소유자,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 선박의 구조배치·기관·설비 등을 변경하거나 개조한 선박소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그 밖의 사항

- 선박 길이·너비·깊이 등을 변경하기 위하여 선박을 개조 또는 수리하는 경우에는 개조 또는 수리에 착수한 때부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처리절차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 33호서식] <개정 2018. 11. 20.>

제 호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서				
선박	선박의 명칭		선박번호	
	선적항		선질	
	총톤수		용도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9. 8. 20.>

(앞 쪽)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신청서

※ 뒤 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 유 자	①성명(대표자명)					
	②주 소					
	③상 호	(전화:)				
④ 선 명		⑤ 선 박 번 호				
⑥ 증 서 유효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⑦ 연장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⑧ 연 장 사 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 유효기간연장 신청안내

(뒤 쪽)

제출하는 곳	대행검사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급법인)	처리부서	지역별 사무소
수 수 료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기준에 따름	처리기간	2일
유의사항	☐ 벌칙 규정 ○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 등을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 등을 소지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5년 ☐ 국제협약증서의 유효기간 ○ 여객선안전증서, 원자력여객선안전증서 및 원자력화물선안전증서: 1년 ○ 화물선안전구조증서, 화물선안전설비증서, 화물선안전무선증서,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 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 국제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 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 위험물운송적합증서, 고속선안전증서, 고속선운항허가증, 특수목적선안전증서 및 국제만재흡수선증서: 5년 ☐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 ○ 해당 선박이 정기검사를 받을 장소에 있지 아니하여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선박이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는 등의 사유로 새로운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를 선박에 비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개월의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 다거리항해(하해를 시작하는 항구부터 최후로 도착하는 항구까지의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9. 8. 20.>

제 호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승인서			
①선 명		②선 박 번 호	
③선 적 항		④선 질	
⑤총 톤 수	톤	⑥용 도	
⑦현증서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⑧연 장 된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⑨연 장 조 건	연장된 기간 내에 해당 선박이 검사받을 장소에 도착한 경우에는 검사 일 후의 기간에 대한 연장의 효력은 상실됨.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 승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형식승인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 청 인	성 명 (대표자명)	국문	상 호 (법인명)	국문
		영문		영문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홈페이지		
	주 소	국문		
		영문		
제 조 자 (수입하여 형식승인을 받는 경우에 적으십시오)	상 호 (법인명)	국문		
		영문		
	주 소	국문		
		영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품명			
	규격			
	형식			
비고				

「선박안전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8. 11. 20.>

발급번호 Issuing No.	제 - 호	증서번호 Certificate No.	제 - 호	유효기간 Valid Till	년 월 일
형 식 승 인 증 서 CERTIFICATE OF TYPE APPROVAL					
신 청 인 Applicant	상 호 Company				
	대 표 자 Name				
	사업자등록번호 Registration No.				
	주 소 Address				
제 조 자 Manufacturer	상 호 Company				
	주 소 Address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Particular of Articles	품 명 Name of Articles				
	규 격 Size				
	형 식 Type				
시험인증 사항 Test Certificate including Test Report	시험기관 Testing Laboratory				
	합격증명서번호 Certificate No.		증명서 발급일자 Date of Issue		
비 고 Remarks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제42조의3제2항 및 제42조의4제2항에 따라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under Article 36.2, 42-3.2 and 42-4.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 Safety Act and the provisions of SOLAS (COLREG, IMO Res., LSA Code). 년 월 일 Y M D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 Director General of the Regional Oceans and Fisheries Office 직인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 청 인	성 명 (대표자명)	국문	상 호 (법인명)	국문	
		영문		영문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홈페이지		
	주 소	국문			
		영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품명				
	규격				
	형식				
	형식승인 증서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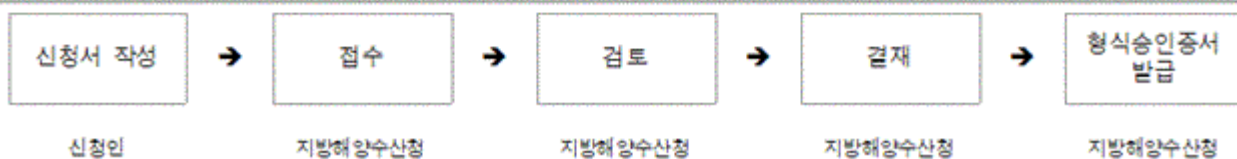
첨부서류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각 호 중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품목당 3,000원
------	---	--------------------------

유의사항

□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승인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 3. 제조 또는 수입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않은 경우
- 5. 「선박안전법」 제75조에 따른 보고·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경우

처리절차



[별지 제39호서식] 삭제 <2018. 5. 1.>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26. 8. 25.>

(앞 쪽)

형식승인시험신청서

※ 뒤 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 상 호	국문		② 전 화	) -
		영문		③ 팩 스	) -
	④ 대표자	국문		⑤ 홈페이지	
		영문		⑦ 사업자등록번호	
	⑥ 주 소	국문			
		영문			
제조사(수입하여 형식승인을 받는 경우에 기재)	⑧ 상 호	국문			
		영문			
	⑨ 주 소	국문			
		영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⑩ 품 명				
	⑪ 규 격				
	⑫ 형 식				
⑬ 형식승인시험을 받으려는 장소 및 일자					
⑭ 비 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신청인(사업시행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사업체의 개요(연혁, 인원 및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수입허가서 사본(수입하려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으로 한정한다) 3.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제조사양서·구조도면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4. 제조 또는 수입할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제조 및 검사설비개요서(수입하여 시험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신청자가 보유한 설비개요서) 5. 형식승인신청업체의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한 서류(품질관리에 관하여 국제표준화기구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서 사본) 6. 형식승인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에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형식승인시험 신청안내

(뒤 쪽)

제출하는 곳	지정시험기관	처리기간	5일
시 험 비 용	지정시험기관이 산출한 금액		
유 의 사 항	□ 형식승인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지정시험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제출하고,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지정시험기관에 내야 합니다. □ 형식승인시험의 면제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시험의 전부를 면제합니다. 가. 형식승인 신청일 전 2년 동안 매년 1회 이상 「선박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나. 「산업표준화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인증 통지를 받은 선박용물건으로서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한 선박용물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정시험기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형식승인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합니다. 가. 해당 형식승인시험 항목에 대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 나. 해당 형식승인시험 항목에 대하여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 다.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물건의 일부 요건을 변경하여 추가로 형식승인을 받거나 형식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41호서식]

제 호 Certificate No. :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CERTIFICATE OF TYPE APPROVAL TEST		
신청인 Applicant	①상 호 Company	
	②대 표 자 Name	
	③사업자등록번호 Registration No.	
	④주 소 Address	
제조사 Manufacturer	⑤상 호 Company	
	⑥주 소 Address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 Particular of Article	⑦품 명 Name of Articles	
	⑧규 격 Size	
	⑨형 식 Type	
⑩ 비 고 Remarks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article has been satisfactorily examined and test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38.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 Safety Act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Y M D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장 인
 Director of Type Approval Testing Institute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220g/m²]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13.3.24>

(앞 쪽)

일부시험의 외부의뢰 등 승인신청서			
신청인	①명 칭		
	②대표자의성명		
	③주 소		
신청내용 (다른 설비 이용 또는 의뢰시험 내용)		④ 시험항목	
		⑤ 시험설비	
⑥ 신청사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시험설비를 이용하거나 일부시험을 타 시험기관에 의뢰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외부에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기관이 해당 시험에 대한 시험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다른 시험설비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험설비가 해당 시험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10mm × 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형식승인시험 신청안내

(뒤 쪽)

제출하는 곳	해양수산부장관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13.3.24>

제 호		
승 인 서		
신청인	① 명 칭	
	② 대표자의 성명	
	③ 주 소	
④ 설비 임차 또는 의뢰 시험기관		
⑤ 시험 항목		
⑥ 의뢰시험내용 또는 이용설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이 승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인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220g/m²]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 ([]지정시험 품목 변경 []시험내용 변경 []지정 받은 사항 변경)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명 칭	국문		
		영문		
	대표자의 성명	국문		
		영문		
	주 소	국문		
		영문		
시험을 하려는 품목, 시험내용 또는 지정받은 사항 변경 내용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 (시험내용 또는 시험품목 변경)을 받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신고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신규지정, 시험품목 또는 시험방법 변경 시> - 지정시험기관의 연혁·설립목적·주 기능·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후가지정 시는 제외합니다) - 형식승인시험에 종사할 인원 및 그 자격을 적은 서류와 그 증빙서류(해당 시험업무 종사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형식승인시험을 하기 위한 시험설비 등의 목록 및 사양서와 시험기기의 검정·교정 관리 계획서 -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설비 이용계획서(다른 시험기관 또는 제조자의 시험설비를 임차하거나 형식승인시험을 위탁의뢰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다른 시험기관 또는 제조자의 명칭, 소재지, 주 기능 등에 관한 사항 나. 임차설비 이용 또는 의뢰하려는 시험의 종류 다. 설비 임차 또는 시험 의뢰의 사유 - 시험품목별로 사용하는 시험설비와 시험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 및 시험방법을 적은 서류 - 해당 시험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검사기관 인증서(후가지정 시 제외합니다)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시>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규지정, 시험품목 또는 시험내용 변경 시> 국가기술자격증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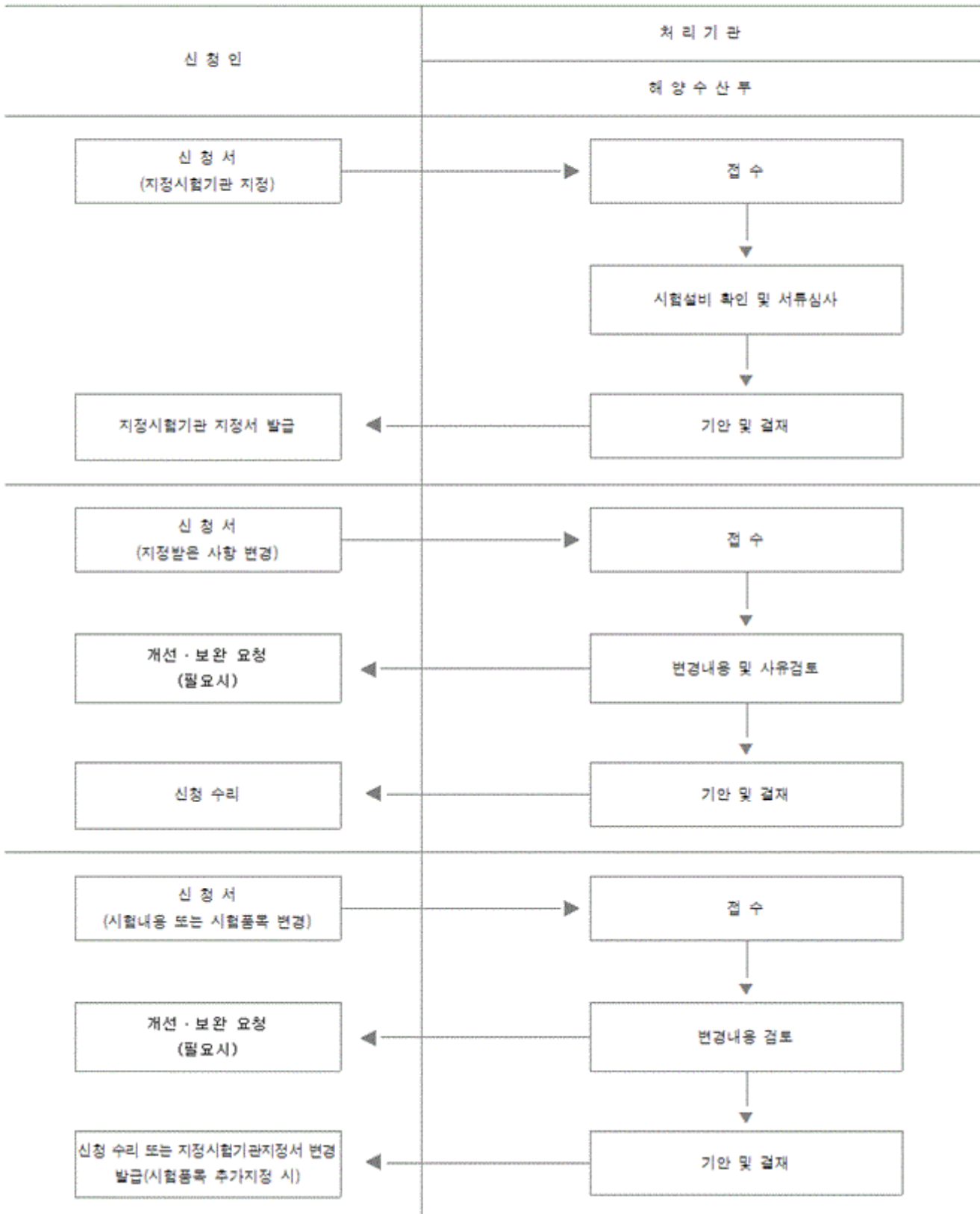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13.3.24>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지정서
 CERTIFICATE OF SHIP'S ARTICLES'
 TYPE-APPROVAL TESTING LABORATORY

발급번호: 제 - 호
 Issuing No.:

증서번호: 제 - 호
 Certificate No.:

① 명 칭 Name	
② 주 소 Address	
③ 시험품목(Items)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및 제42조제3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laboratory is designated as Type-Approval Testing Laboratory in accordance with Article 40.2 and 42.3 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 Safety Act.

년 월 일
 Y M D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210mm × 297mm(보존용지(1종)220g/m²)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 <개정 2023. 7. 11.>

정부24(www.minwon.go.kr)에서
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 갱신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 청 인	성명 (대표자명)	국문	상호 (법인명)	국문			
		영문		영문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홈페이지				
	주소	국문					
영문							
제 조 자 (수입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호 (법인명)	국문					
		영문					
	주소	국문					
		영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품명	컨테이너		형식			
	규격			종류			
	형식						
최초 형식승인증서 번호 및 발행일자							

[] 「선박안전법」 제1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4제1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선박안전법」 제2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서류	1. 형식승인증서 2. 최근 2년 이내 형식승인증서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품목당 3,000원
------	---	--------------------------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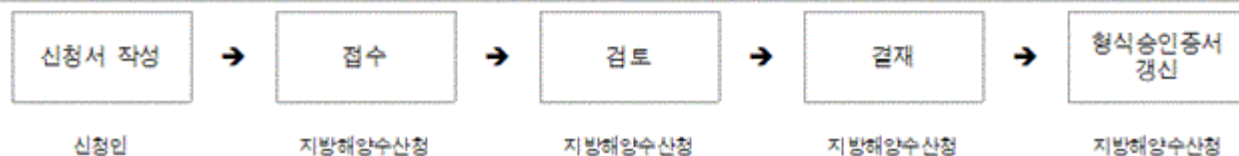
□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형식승인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형식승인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검정을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3.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4. 제조 또는 수입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않은 경우
 6. 「선박안전법」 제75조에 따른 보고·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경우

□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형식승인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형식승인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컨테이너검정을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검정을 받은 경우
 3. 컨테이너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후 2년 이상 계속하여 컨테이너를 제조하지 않은 경우
 5. 「선박안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컨테이너가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안전법」 제75조에 따른 보고·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경우

처리절차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19. 8. 20.>

(앞 쪽)

검 정 신 청 서

※ 뒤 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소	(전화:)		
제조사	⑤ 상 호			
	⑥ 주 소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내용

⑤ 형식승인 증서번호	⑥ 품 명	⑦ 규 격	⑧ 형 식	⑨ 수 량	⑩ 제조번호	⑪ 제조일자

⑫ 검 정 요 청 일		⑬ 검 정 장 소	
-------------	--	-----------	--

⑭ 비 고	
-------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신청안내

(뒤 쪽)

제출하는 곳	대행검사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급법인)	처리부서	지역별 사무소
수 수 료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처리기간	5일
유 의 사 항	☐ 벌칙 규정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과태료 규정 - 형식승인시험 또는 변경승인시험에 합격한 선박용물건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검정을 받아야 합니다. ☐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크기나 모양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형식승인 품명·형식 및 규격(규격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형식승인증서 번호 및 형식승인 일자 - 제조연월일 표시 일련번호(예: 20070112 -1) ☐ 검사의 생략 -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검정을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선박안전법」 제7조(건조검사), 제8조(정기검사), 제9조(중간검사), 제10조(임시검사), 제11조(임시항해검사) 및 같은 법 제12조(국제협약검사)에 따른 최초의 선박검사 또는 건조검사 시 그 합격된 부분의 검사를 생략합니다.		

[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19. 8. 20.>

제 호 Certificate No.:						
검 정 증 서 CERTIFICATE OF SHIP EQUIPMENT INSPECTION FOR SHIP USE OF APPROVED TYPE						
신청인 Applicant	①상 호 Company					
	②대표자 Name					
	③사업자등록번호 Registration No.					
	④주 소 Address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내용(PARTICULAR OF ARTICLES)						
⑤형식승인증서 번호 Type Approval Certificate No.	⑥품명 Name of Articles	⑦규격 Size	⑧형 식 Type	⑨수 량 Quantity	⑩제조번호 Manufacturer Serial No.	⑪제조일자 Date of Manufacturer
⑫비 고 Remarks						
「선박안전법」 제18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articles have been examined and test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18.10 of the Ship Safety Act and Article 44.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 Safety Act and the provisions of (□ IMO Res. □ SOLAS □ LSA Code □ COLREG)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Y M D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선 급 법 인 의 장)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220g/m²]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2서식] <신설 2023. 7. 11.>

[]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 컨테이너 형식승인 지위승계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법인 소재지)	
	명칭(상호)	
양도인·피상속인 또는 합병 전 법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법인 소재지)	
	명칭(상호)	
권리·의무 승계일 (합병일)		
권리·의무 승계 (합병)의 사유		
승계 후 형식승인서 변경 기재사항		

[] 「선박안전법」 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5제1항에 따라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선박안전법」 제2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 제45조의5제1항에 따라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경우 1.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선박안전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나. 「선박안전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 「선박안전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형식승인증서 사본 □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경우 1.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이 경우 컨테이너형식승인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면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 「선박안전법」 제2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나. 「선박안전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 「선박안전법」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 사본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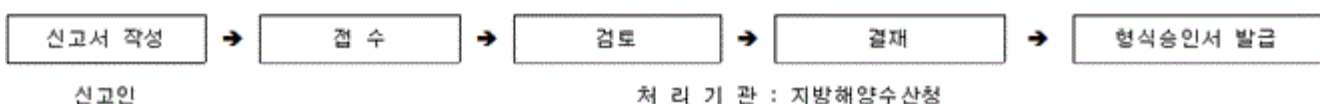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중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 47호의 3서식] <신설 2023. 7. 11.>

☐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 컨테이너		☐ 판매중지 ☐ 회수 ☐ 교환 ☐ 폐기		명령서
형식승인의 내용	품목			
	형식			
	형식승인증서 번호			
	제조단위번호 (또는 제조번호)			
제조일 또는 수입일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소재지				
결함 내용				
회수·교환·폐기의 기한	☐ 회수	년	월	일
	☐ 교환	년	월	일
	☐ 결함 발생의 원인이 된 부품의 교환	년	월	일
	☐ 폐기	년	월	일
비고				
☐ 「선박안전법」 제1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즉시 판매중지하고 ☐ 회수 ☐ 교환 ☐ 폐기할 것을 명합니다.				
☐ 「선박안전법」 제23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4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컨테 이너를 즉시 판매중지하고 ☐ 회수 ☐ 교환 ☐ 폐기할 것을 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20g/㎡)]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22. 1. 20.>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사업장지정(변경)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지정사업장의 지정	21일
			지정사업장의 지정 변경	14일

신청인	상 호	국문		전화	
		영문		팩스	
	대 표 자	국문		홈페이지	
		영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국문			
		영문			

사업장 주소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형식승인증서 번호	품 명	규 격	형 식
비 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라 지정([]제조, []정비)사업장의 지정(변경승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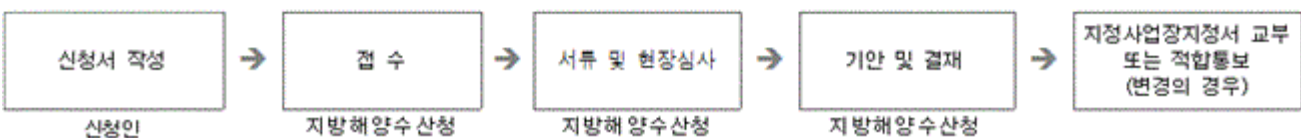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지정사업장 지정을 신청할 경우 가. 사업장의 연혁·조직 및 업무 분장의 개요 나.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제조에 관한 설명서(지정제조사업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로 한정한다) 라. 선박용물건의 정비에 관한 설명서(지정정비사업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로 한정한다) 마.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한 자체검사기준 2. 지정사업장으로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	수수료 · 지정사업장의 최초 지정 시 : 100,000원, 1품목 추가 시 30,000원 · 지정품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품목당 30,000원
------	--	--

처리절차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18. 5. 1.>

지정사업장지정서			
CERTIFICATE OF RECOGNIZED MANUFACTURING (MAINTENANCE) FACTORY			
발 급 번 호 : 제 - 호		증 서 번 호 : 제 - 호	
Issuing No. :		Certificate No.:	
사 업 자	상 호 Company		
	대 표 자 Name		
	사업자등록번호 Registration No.		
	주 소 Address		
사업장의 주소 Factory Address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Particular of Articles			
형식승인증서 번호 Type Approval Certificate No.	품 명 Name of Articles	규 격 Size	형 식 Type
비 고 Remarks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라 이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factory above has been designated as a recognized manufacturing and maintenance factory in accordance with Article 48.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 Safety Act. 년 월 일 Y M D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 Director General of the Regional Oceans and Fisheries Office 직인			

210mm×297mm [백상지 150g/m²]

[별지 제50호서식] <개정 2019. 8. 20.>

(앞 쪽)

확 인 신 청 서

※ 뒤 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표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소	(전화:)				
⑤ 사업장 주소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내용						
⑥ 형식승인증서 번호	⑦ 품 명	⑧ 규격	⑨ 형식	⑩ 수량	⑪ 제조 (정비)번호	⑫ 제조 (정비)일자
⑬ 확인요청일자	년 월 일			⑭ 확인장소		
⑮ 비 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 제조 ☐ 정비)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신청안내

(뒤 쪽)

제출하는 곳	대행검사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급법인)	처리부서	지역별 사무소
수 수 료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처리기간	5일
유 의 사 항	☐ 확인대상 ○ 제조확인대상 품목(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 정비확인대상 품목(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크기나 모양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정사업장의 명칭, 지정번호 및 지정일자 ○ 지정 품명·형식 및 규격(규격이 있는 경우에만 표시한다) ○ 제조일자 또는 정비일자 ○ 제조번호 또는 정비번호 ☐ 검사의 생략 ○ 합격증서 또는 확인서로 확인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 중 최초로 하는 검사는 합격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19. 8. 20.>

제 호 Certificate No.						
제조(정비)확인서 CERTIFICATE of MANUFACTURING (MAINTENANCE) VERIFICATION						
사 업 자	①상 호 Company					
	②대 표 자 Name		③사업자등록번호 Registration No.			
	④주 소 Address					
⑤사업장 주소 Factory Address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내용 Particular of Articles						
⑥ 형식승인증서 번호 Type Approval Certificate No.	⑦ 품명 Articles	⑧ 규격 Size	⑨ 형식 Type	⑩ 수량 Quantity	⑪제조(정비)번호 Manufacturer Serial No.	⑫비 고 Remarks
「선박안전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under Article 20.6 of the Ship Safety Act and Article 50.3 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 Safety Act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Y M D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 국 해 양 교 통 안 전 공 단 이 사 장)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선 급 법 인 의 장)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220g/m²]

[별지 제52호서식] <개정 2018. 5. 1.>

제 호 Certificate No. :						
합 격 증 서 CERTIFICATE OF MANUFACTURING (MAINTENANCE) APPROVED USE						
사 업 자	①상 호 Company					
	②대 표 자 Name		③사업자등록번호 Registration No.			
	④주 소 Address					
⑤사업장 주소 Factory Address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내용 Particular of Articles						
⑥ 형식승인증서 번호 Type Approval Certificate No.	⑦ 품 명 Articles	⑧ 규격 Size	⑨ 형식 Type	⑩수량 Quantity	⑪제조 (정비)번호 Manufacturer Serial No.	⑫비 고 Remarks
「선박안전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under Article 20.6 of the Ship Safety Act and Article 5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 Safety Act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Y M D						
지 정 사 업 장 의 장 인 President of Designated Factory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220g/m²]

[별지 제53호서식] <개정 2019. 8. 20.>

(앞 쪽)

예 비 검 사 신 청 서

※ □는 해당 란에 √표시하며, 뒤 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① 성 명 (대표자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상 호	(전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내용						
⑤ 품 명	⑥ 규 격	⑦ 형 식	⑧ 수량	⑨ 제 조 번 호	⑩ 비 고	
⑪ 수검요청일자		년 월 일		⑫ 수검장소		
⑬ 신 청 구 분	☐ 제 조 ☐ 개 조 ☐ 수리·정비 ☐ 수 입					
⑭ 비 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한 예비검사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4조제6항에 따라 승인 받은 도면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재활용품)]

예비검사 신청안내

(뒤 쪽)

제출하는 곳	대행검사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급법인)	처리부서	지역별 사무소
수 수 료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기준에 따름	처리기간	25일
유 의 사 항	☐ 벌칙 규정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비검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예비검사대상 ○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 ☐ 그 밖의 사항 ○ 예비검사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에 대하여 제조·개조·수리 또는 정비에 착수한 때부터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입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가 수입된 이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팽창식구명설비의 수리·정비에 따른 예비검사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확인을 받은 곳에서 받아야 합니다. ○ 예비검사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에 대해서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에서 그 합격된 부분의 검사를 생략합니다.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개정 2018. 11. 20.>

팽창식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 호 (법인명)		
	성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시설내역 및 인원	시설의 소재지		
	시설 면적 (㎡)		
	인원 정비기술자 : 명, 작업원 : 명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팽창식구명설비에 대한 수리 또는 정비시설 등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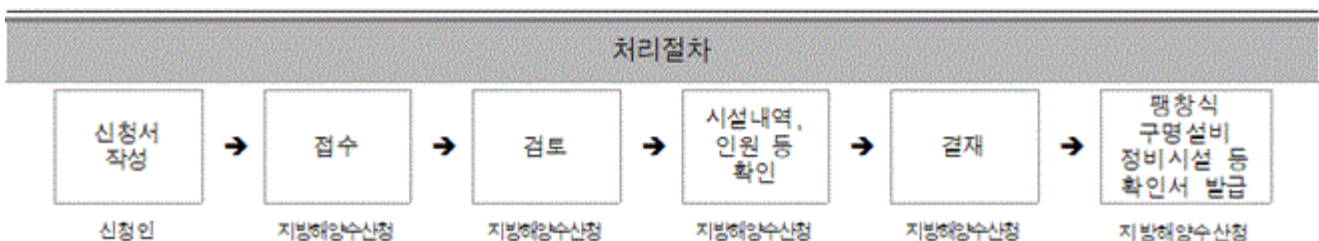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시설명세서 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2호가목에 따른 정비기술자의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4호에 따른 정비기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정비시설 등의 기준

- 시설: 작업장, 수세장, 누설 시험장, 부품 진열장, 사무실 및 위험물저장소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인원: 팽창식구명설비의 제작회사 또는 정비사업장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팽창식구명설비에 관한 정비기술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자와, 정비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원을 각각 2명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 55호서식] <개정 2018. 11. 20.>

제 호		
팽창식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		
수리 또는 정비 사업자	상 호 (법인명)	
	성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시설의 소재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라 팽창식구명설비에 대한 수리 또는 정비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19. 8. 20.>

제 호 Certificate No.:					
예 비 검 사 증 서 CERTIFICATE OF ARTICLES FOR SHIP USE					
신 청 인 Applicant	①성명(대표자명) Name		②사업자등록번호 Registration No.		
	③상 호 Company	(전화(Tel.):)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내용 PARTICULAR OF ARTICLES					
④ 품 명 Name of Articles	⑤규 격 Size	⑥형 식 Type	⑦수 량 Quantity	⑧제 조 번 호 Manufacturer Serial No.	⑨검 사 번 호 Inspection No.
⑩비 고 Remarks					
「선박안전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7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2.3 of the Ship Safety Act and Article 54.7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 Safety Act and the provisions of (☐ IMO Res. ☐ SOLAS ☐ LSA Code ☐ COLREG)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Y M D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 국 해 양 교 통 안 전 공 단 이 사 장)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선 급 법 인 의 장)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220g/m²]

컨테이너형식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상 호 (법인명)		
	성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컨테이너	형식		
비 고			

「선박안전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라 위의 컨테이너에 대하여 형식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3,000원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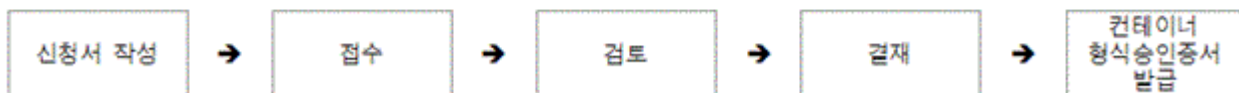
유의사항

☐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 정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형식승인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형식승인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컨테이너검정을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검정을 받은 경우
3. 컨테이너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후 2년 이상 계속하여 컨테이너를 제조하지 않은 경우
5. 「선박안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컨테이너가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안전법」 제 75조에 따른 보고·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경우

처리절차



신청인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 58호서식] <개정 2023. 7. 11.>

발급번호 Issuing No.	제 - 호	증서번호 Certificate No.	제 - 호	유효기간 Valid Until	년 월 일
컨테이너 형식 승인증서 CERTIFICATE OF FREIGHT CONTAINER TYPE APPROVAL CERTIFICATE					
제 조 자 Manufacturer	상 호 Company				
	대 표 자 Name				
	사업자등록번호 Registration No.				
	주 소 Address				
컨테이너 Container	형 식 Type				
	종 류 Kind of Container				
시험인증 사항 Test Certificate including Test Report	시험기관 Testing Laboratory				
	증서번호 Certificate No.		증명서 발급일자 Date of Issue		
비 고 Remarks					
「선박안전법」 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에 따라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under Article 23.4 of the Ship Safety Act and Article 56.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 Safety Act and the provisions of CSC. 년 월 일 Y M D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 Director General of the Regional Oceans and Fisheries Office 직인					

[별지 제58호의2서식] <개정 2023. 7. 11>

(앞 쪽)

컨테이너 형식 승인 시험 신청서

※ 뒤 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 상 호	국문			전화	) -
		영문			팩스	) -
	② 대표자	국문			홈 페이지	
		영문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소	국문				
		영문				
컨테이너	⑤ 품 명					
	⑥ 규 격					
	⑦ 형 식		⑧ 제 조 번 호			
⑨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을 받으려는 장소 및 일자						
⑩ 비 고						
「선박안전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비 서 류		1. 컨테이너의 제조사양서, 구조도면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형식승인사항 변경을 위한 형식승인 시험시에는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서류만 첨부한다) 2. 컨테이너의 제조 및 검사설비개요서(형식승인사항 변경을 위한 형식승인 시험시에는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서류만 첨부한다)				

형식승인시험 신청안내

(뒤 쪽)

제출하는 곳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		
시 험 비 용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 산출한 금액	처리기간	14일
유 의 사 항	☐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을 받으려는 컨테이너 또는 재료를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제출하고, 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내야 합니다.		

[별지 제58호의3서식] <개정 2023. 7. 11.>

제 호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신 청 인	①상 호		
	②대 표 자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 소		
컨테이너	⑤품 명		
	⑥규 격		
	⑦형 식		
⑧제 조 번 호			⑨제 조 일 자
⑩비 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에 따라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장 인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220g/m²]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상 호 (법인명)		
	성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컨테이너	형식	형식증서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선박안전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의 컨테이너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변경하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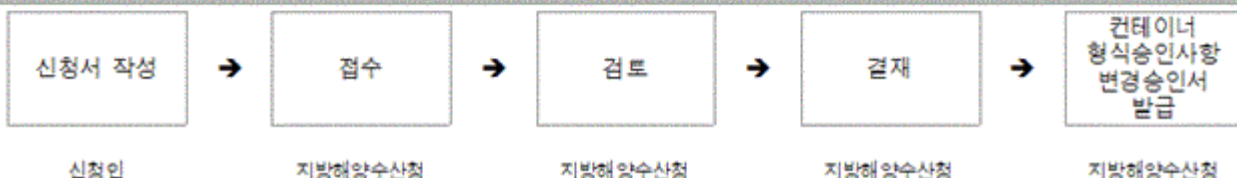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3,000원
------	----	---------------

유의사항

- ☐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 정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형식승인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형식승인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컨테이너검정을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검정을 받은 경우
 3. 컨테이너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후 2년 이상 계속하여 컨테이너를 제조하지 않은 경우
 5. 「선박안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컨테이너가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안전법」 제75조에 따른 보고·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경우

처리절차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 60호서식] <개정 2023. 7. 11.>

발급번호 Issuing No.	제 - 호	형식승인증서번호 제 - 호 Certificate No.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 CERTIFICATE OF CHANGE OF FREIGHT CONTAINER TYPE APPROVAL CERTIFICATE				
신 청 인 Applicant	상 호 Company			
	대 표 자 Name			
	사업자등록번호 Registration No.			
	주 소 Address			
컨테이너 Container	형 식 Type			
	형식증서번호 Certificate No.			
시험인증 사항 Test Certificate including Test Report	시험기관 Testing Laboratory			
	합격증서번호 Certificate No.	증서 발급일자 Date of Issue		
변 경 사 항 Contents Changed	변경 전 Before		변경 후 After	
「선박안전법」 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under Article 23.4 of the Ship Safety Act and Article 58-2.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 Safety Act. 년 월 일 Y M D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 Director General of the Regional Oceans and Fisheries Office 직인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58호의2서식]으로 이동 <2023. 7. 11.>

[별지 제62호서식] [별지 제58호의3서식]으로 이동 <2023. 7. 11.>

[별지 제63호서식] <개정 2023. 7. 11.>

(앞 쪽)

컨테이너검정신청서

※ 뒤 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 명칭 또는 성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④ 형식				
⑤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 번호			⑥ 컨테이너형식 승인일자	
검정을 받으려 는 사업장	⑦ 명칭			
	⑧ 소재지			
⑨ 검정을 받으려는 일자		년	월	일
⑩ 제조번호				
⑪ 수량				

「선박안전법」 제23조제7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위의 컨테이너에 대하여 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컨테이너검정 신청안내

(뒤 쪽)

제출하는 곳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수 수 료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처리기간	14일
유의사항	☐ 컨테이너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컨테이너 검정기준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합니다.		

[별지 제64호서식] <개정 2023. 7. 11.>

제 호					
컨테이너검정증서 CERTIFICATE OF INSPECTION ON ARTICLES FOR SHIP USE OF APPROVED TYPE					
신청인 Applicant	①상 호 Company				
	②대표자 Name				
	③사업자등록번호 Registration No.				
	④주 소 Address				
컨테이너의 내용(PARTICULAR OF ARTICLES)					
⑤형식승인증서 번호 Type Approval Certificate No.	⑥규격 Size	⑦형 식 Type	⑧수 량 Quantity	⑨제 조 번 호 Manufacturer. Serial No.	⑩제 조 일 자 Date of Manufacturer.
⑪비고 Remarks					
「선박안전법」 제2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3.7 of the Ship Safety Act and Article 59.2 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 Safety Act and the provisions of CSC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Y M D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 국 해 양 교 통 안 전 공 단 이 사 장)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선 급 법 인 의 장)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220g/m²]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 <개정 2023. 7. 11.>

CSC SAFETY APPROVAL**컨테이너안전승인판**

[1] / [2]

검사
증인

DATE MANUFACTURED

IDENTIFICATION No.

MAXIMUM OPERATING GROSS MASS kg lbs

ALLOWABLE STACKING LOAD FOR 1.8g kg lbs

TRANSVERSE RACKING TEST FORCE newtons

가로: 200mm 이상, 세로: 100mm 이상

비고:

- 1행: [1]은 승인국명을 국제도로교통 상 차량의 등록국을 표시하는데 쓰이는 식별부호로 표시하며, [2]는 승인 식별 번호를 표시한다(예: ROK/KR-001/13).
- 2행: 컨테이너 제조일(월 및 년)
- 3행: 제조자 일련번호, 단 안전승인판이 컨테이너와 관련된 다른 규정에 따른 승인판과 통합된 형식이라면 제조자 일련번호는 통합된 안전승인판의 다른 곳에 표시할 수 있다. 또한, ISO 6346에 따른 소유자 일련번호를 통합된 안전승인판의 다른 곳에 표시할 수 있다.
- 4행: 컨테이너 최대총질량
- 5행: 허용되는 겹침적재 하중
- 6행: 가로방향 래킹시험하중(가로방향 비대칭 외력시험)
- 7행 및 8행: 끝벽 및 옆벽이 각각 0.4Pg 및 0.6Pg보다 크거나 작은 힘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컨테이너에서는 안전승인판 하부의 빈 공간에 끝벽 및 옆벽 강도를 표시한다(예: END-WALL STRENGTH 0.5P, SIDE-WALL STRENGTH 0.5P).
- 9행: 안전승인판에 보수점검일을 기입할 목적으로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신조 컨테이너의 최초 보수점검일(월 및 년) 또는 다음 보수점검일(월 및 년) 기입한다.
9. 한쪽 문이 열린 상태에서 운송 가능하도록 설계된 컨테이너는 한쪽 문이 열린 상태에서의 겹침적재 및 가로방향 래킹시험 하중을 표시한다.
(예: ALLOWABLE STACKING LOAD ONE DOOR OFF FOR 1.8g.....kg.....lbs
TRANSVERSE RACKING TEST FORCE ONE DOOR OFF.....newtons)
10. 안전승인판은 영구성, 내식성(耐蝕性) 및 내화성(耐火性)을 갖는 재료로 하고, 컨테이너에 영구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11. CSC SAFETY APPROVAL 문자의 크기는 8mm 이상, 다른 문자 및 숫자의 크기 5mm 이상으로 하고 판 위에 각인 또는 부각시키거나, 영구적이면서 보기 쉬운 다른 방법으로 표시한다.
12. 검사증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 59조제 3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의 합격을 나타내는 확인 표시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6호서식] <개정 2023. 7. 11.>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 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알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상 호 (법인명)		
	성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장	명칭		
	소재지		
컨테이너	종류		
	규격		
비고			

- [] 「선박안전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 정기[] 계속[] 점검방법의 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선박안전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제3항에 따라 컨테이너 정기[] 계속[] 점검방법의 변경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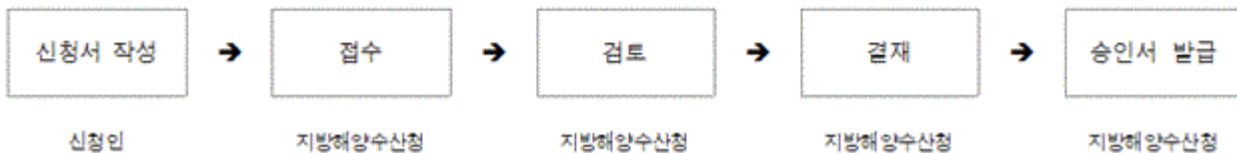
첨부서류	1. 회사의 연혁·조직 및 업무분장 등 회사의 개요를 설명하는 서류 2.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 부속서 I 제2규칙제 4항에 따른 안전점검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선박안전법」 제24조제 1항 후단에 따라 같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하여금 컨테이너 안전점검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증 사본 4. 승인받은 안전점검방법 중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서류(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

-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및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안전점검방법을 승인받지 않고 컨테이너를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승인받은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처리절차



[별지 제67호서식] <개정 2023. 7. 11.>

제 호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 승인·변경승인서		
신청인	① 상호	
	② 성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	
승인을 받은 사 업 장	⑤ 명칭	
	⑥ 소재지	
⑦승인을 받은 컨테이너의 종류 및 규격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5조제2항에 따라 이 승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인		
첨 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5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사본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220g/m²] _____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의2서식] <신설 2023. 7. 11.>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상 호	국문	전 화		
		영문	팩 스		
	대 표 자	국문	홈페이지		
		영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국문			
		영문			
사업장 주소 지방사무소 또는 분소 (해당하는 경우)					
책임점검자		국문			
		영문			
비 고					

[] 「선박안전법」 제2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의3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 점검사업자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선박안전법」 제24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의3제4항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 점검사업자 변경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가.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나. 사업계획서 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제29의2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다음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컨테이너 안전점검 설명서 1) 컨테이너 안전점검 설비 사용설명서 2) 컨테이너 치수 등 계속장비 사용설명서 3) 중대한 결함 등이 발견되었을 때의 조치절차 등 안전점검 절차 및 방법 4) 책임점검자의 임명 요건 및 절차 2.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사항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지방해양수산청	→	서류 및 현장심사 지방해양수산청	→	기안 및 결재 지방해양수산청	→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증 교부 지방해양수산청
---------------	---	----------------	---	----------------------	---	--------------------	---	--------------------------------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의3서식] <신설 2023. 7. 11.>

등록번호 제(지방청명)-(연도)-(발행번호) 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증

1. 상호(명칭):
2. 대표자(성명):
3. 사업장 주소:
4. 지방사무소(분소)의 주소:
5. 등록 연월일:
6. 책임점검자(성명):

「선박안전법」 제2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의3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20g/㎡)]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개정 2025. 12. 26.>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납부 통지서

납부자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위반내역	위반일자
	위반행위
납부내역	발행번호
	납부금액
	납부기한
	수납기관

「선박안전법」 제2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컨테이너 안전 조치 비용납부를 통지합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 69호서식] <개정 2018. 11. 20.>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납부 고지서

조치비용 납부통지서 (수납기관 보관용)			조치비용 영수필통지서 (지방해양수산청 보관용)			조치비용 납부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발행번호			발행번호			발행번호		
납부자	상호(명칭)		납부자	상호(명칭)		납부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납부자	성명(대표자)			납부자
위반일자			위반일자			위반일자		
위반행위			위반행위			위반행위		
납부금액		원	납부금액		원	납부금액		원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부기한		
수납기관			수납기관			수납기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치금액을 통지하오니 납부 기한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와 같이 납입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지방해양수산청장 인		수납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수납인			수납인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서식] <개정 2015.7.15.>

[illegible]

[별지 제71호서식] <개정 2020. 6. 17.>

제 한 하 중 등 신 청 서					처리기간
					25일
①선 명			②선 박 번 호		
③종류·위치 및 번호	④하중시험을 할 때 붐의 각도(지브크레인의 선회반지름)	⑤시험하중 (톤)	⑥제한하중 (톤)	⑦제한각도 (제한반지름)	⑧비 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에 따라 하역설비에 대한 제한하중등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별지 제72호서식] <개정 2020. 6. 17.>

제 호					
제 한 하 중 등 확 인 서					
①선 명			②선 박 번 호		
③종류·위치 및 번호	④하중시험을 할 때 붐의 각도(지브크레인의 선회반지름)	⑤시험하중 (톤)	⑥제한하중 (톤)	⑦제한각도 (제한반지름)	⑧비 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73호서식]

(1/3)

하역설비검사기록부

①선 명	
②선 박 번 호	
③선 적 항	
법제처	762

(3/3)

(2) 하역장치(크레인, 윈치 및 호이스트)의 검사 기록

종류 및 그 위치 또는 번호	제한하중 등 지정 서 번호	검 사 연월일	검사담당자 성명	검 사 연월일	검사담당자 성명	검 사 연월일	검사담당자 성명	검 사 연월일	비 고

[별지 제74호 서식] 삭제 <2012.1.3>

[별지 제75호 서식] 삭제 <2012.1.3>

[별지 제76호서식] <개정 2019. 8. 20.>

제 호 Certificate No.:			
예 인 선 항 해 검 사 증 서 TOWING CERTIFICATE			
①선 명 Name of Ship		②선 박 번 호 Official Number	
③선 적 항 Port of Registry		④선 질 Ship's Material	
⑤총 톤 수 Gross tonnage	톤 tons	⑥용 도 Type of Ship	
⑦추 진 기 관 Main Engine	기 관 기 관 Type	[kW] [PS] [kW] [PS] Output	대 Number of Units
⑧선 박 길 이 Ship's Length	미 터 m	⑨무 선 설 비 Radio Equipment	
⑩항 해 구 역 Navigation Area			
⑪최대승선인원 Max. Number of Allowable Persons on board	명(여객: 명, 선원: 명, 임시승선자: 명) Total p(Passenger: p, Crew: p, Special Personnel: p)		
⑫항해와 관련한 조건 Condition for Navigation			
⑬유효 기 간 Validity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This certificate is valid from . . . until . . .		

[별지 제77호서식] <개정 2018. 5. 1.>

증서 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1일	
※ □는 해당란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자	① 성명 (대표자명)			
	② 주소			
	③ 상호	(전화:)		
④ 재발급받으려는 증서의 종류		☐ 건조(별도건조)검사증서 ☐ 선박검사증서 ☐ 임시변경증 ☐ 임시항해검사증서 ☐ 국제협약검사증서 ☐ 선박구조등변경허가서 ☐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승인서 ☐ 형식승인증서 ☐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 지정시험기관지정서 ☐ 승인서 ☐ 검정증서 ☐ 지정사업장지정서 ☐ 확인서 ☐ 팽창식구명설비정비시설등확인서 ☐ 예비검사증서 ☐ 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 ☐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서 ☐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 컨테이너검정증서 ☐ 컨테이너정기(계속)점검방법승인서 ☐ 제한하중등확인서 ☐ 하역설비검사기록부 ☐ 예인선항해검사증서		
선박	⑤ 선명		⑥ 선박번호 또는 제조번호	
	⑦ 선적항		⑧ 총톤수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⑨ 품명		⑩ 규격·형식	
	⑪ 제조번호		⑫ 검사번호	
⑬ 신청사유				
⑭ 비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증서를 재발급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헐어 못쓰게 된 경우: 해당 증서 2.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증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8호서식] <개정 2013.3.24>

(앞 쪽)

협 정 신 청 서

※ 뒤 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① 명 칭	국문			② 전 화	) -
		영문			③ 팩 스	) -
	④ 대표자	국문			⑤ 홈 페 이 지	
		영문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주 소	국문				
		영문				
⑧ 검사동 업무를 대 행받으려는 범위						
⑨ 비 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 검사동업무를 대행에 대하여 협정을 체결
하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제처

신 청 인

776
(서명 또는 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협정 신청안내

(뒤 쪽)

제출하는 곳	해양수산부장관	처리부서	안전관리관
수 수 료	-	처리기간	10일
유 의 사 항	☐ 협정기간의 연장 ○ 협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협정기간의 종료일 90일 전까지 협정신청서에 제83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협정체결 당시와 변경이 없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9호서식] <개정 2018. 11. 20.>

항만국통제점검보고서

FORM A

REPORT OF INSP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PORT STATE CONTROL IN THE ASIA-PACIFIC REGION¹⁾

(reporting authority)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
 (address) Sejong Government Complex, 94, Dasom-ro, Sejong,
 Republic of Korea
 (telephone) +82-44-200-5815
 (telefax) +82-44-200-5848
 (e-mail address) psckorea@korea.kr

Copy to: master

head office

PSCO

If ship is detained, copy to:

flag State

IMO

recognized organization, if applicable

1 name of reporting authority REPUBLIC OF KOREA 2 name of ship _____
 3 flag of ship _____ 4 type of ship _____ 5a call sign _____ 5b MMSI number _____
 6 IMO number _____ 7 gross tonnage _____ 8 deadweight (where applicable) _____
 9 date keel laid _____ 10 date of inspection _____ 11 place of inspection _____
 12 classification society _____ 13 date of release from detention²⁾ _____
 14a IMO company number _____ 14b particulars of company _____

15 name and signature of master to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under 14b is correct:

name _____

signature _____

16 details of ship certificates

a title	b issuing authority	c date of issue and expir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d information on last intermediate or annual survey

date	surveying authority	place
1		
2		
3		
4		
5		

17 deficiencies ☐ no ☐ yes (see attached FORM B)
 18 ship detained ☐ no ☐ yes³⁾
 19 supporting documentation ☐ no ☐ yes (see annex)

issuing office _____

name _____
(duly authorized PSCO of reporting authority)

telephone _____

telefax _____

signature _____

* This report must be retained on board for period of two years and must be available for consultation by Port State Control Officers at all times.

* If the owner of a ship objects to the detention of a vessel, he will have a right of appeal against a detention within 90 days from date of detention.

1) This inspection report has been issued solely for the purpose of informing the master and other port State that an inspection by the port State, mentioned in the heading, has taken place. This inspection report cannot be construed as a seaworthiness certificate in excess of the certificates the ship is required to carry.

2) To be completed in the event of a detention.

3) Masters and companies are advised that detailed information on a detention may be subject to future publication.

Copy to: master
head office
PSCO

If ship is detained, copy to:
flag State
IMO
recognized organization, if applicable

[illegible]

4) This inspection was not a full survey and deficiencies listed may not be exhaustive. In the event of a detention, it is recommended that full survey is carried out and all deficiencies are rectified before an application for re-inspection is made.

5) To be completed in the event of a detention.

6) Applicable Deficiency Action Codes (see reverse side of copy) to be entered.

(reverse side of Form B)

codes for action taken

code

Deficiency action code

- 10 Deficiency rectified
- 15 Rectify deficiency at next port
- 16 Rectify deficiency within 14 days
- 17 Rectify deficiency before departure
- 18 Rectify deficiency within 3 months
- 30 Detainable deficiency
- 46 Rectify detainable deficiency at agreed repair port
- 48 As in the agreed flag state condition
- 49 As in the agreed rectification action plan
- 99 Other (specify in clear text)

PSC inspection action code (tick as applicable)

- 26 Competent security authority informed ☐
- 27 Ship expelled in security grounds ☐
- 40 Next port informed ☐
- 50 Flag State/consul informed ☐
- 55 Flag State/consulted ☐
- 70 Recognized organization informed ☐
- 85 Investigation of contravention of discharge provisions (MARPOL) ☐
- 151 ILO informed ☐
- 152 Seafarers' organization informed ☐
- 155 Ship owner representative informed ☐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 80호서식] <개정 2022. 1. 20.>

제 호			
항 해 정 지 명 령 서			
①선 박 명		②선 장 명	
③선 박 번 호		④국 적	
⑤총 톤 수		⑥선 종	
⑦입 항 일 자	년 월 일	⑧출항예정일자	년 월 일
⑨항해정지사유			
⑩항해정지기간 및 해제조건			
⑪비 고	항해정지 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출항할 수 있으니 사유가 해소 되면 즉시 해당 선박검사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 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1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항해정지명령서 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인]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220g/m²]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 <개정 2022. 1. 20.>

제 호			
시 정·보 완 명 령 서			
①선 박 명		②선 장 명	
③선 박 번 호		④국 적	
⑤총 톤 수		⑥선 종	
⑦입 항 일 자	년 월 일	⑧출항예정일자	년 월 일
⑨시정·보완 사유			
⑩시정·보완 기간 및 해제조건			
⑪비 고	시정·보완 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출항할 수 있으니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해당 선박검사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 82호서식] <개정 2025. 12. 26.>

제 호			
항 해 정 지 명 령 서			
①선 박 명		②선 장 명	
③선 박 번 호		④국 적	
⑤총 톤 수		⑥선 종	
⑦입 항 일 자	년 월 일	⑧출항예정일자	년 월 일
⑨항해정지 사유			
⑩항해정지 기간 및 해제조건			
⑪비 고	항해정지 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출항할 수 있으니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해당 선박검사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항해정지명령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인]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220g/m²]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 83호서식] <개정 2025. 12. 26.>

제 호			
시 정 · 보 완 명 령 서			
①선 박 명		②선 장 명	
③선 박 번 호		④국 적	
⑤총 톤 수		⑥선 종	
⑦입 항 일 자	년 월 일	⑧출항예정일자	년 월 일
⑨시정 · 보완 사유			
⑩시정 · 보완 기간 및 해제조건			
⑪비 고	시정 · 보완 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출항할 수 있으니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해당 선박검사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2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시정 · 보완명령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인]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220g/m²]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개정 2018. 11. 20.>

재검사[] 재검정[] 재확인[]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알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 청 인	성명(대표자명)	상호(법인명)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팩스번호)
	주소		
재검사 등의 종류	☐ 건조(별도건조)검사 ☐ 정기검사 ☐ 중간검사 ☐ 임시검사 ☐ 임시항해검사 ☐ 국제협약검사 ☐ 도면승인 ☐ 선체 두께측정 ☐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 ☐ 복원성자료승인 ☐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 및 확인 ☐ 예비검사 ☐ 제한하중등확인 ☐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승인 ☐ 강화검사 ☐ 예인선항해검사 ☐ 컨테이너의 검정 ☐ 위험물의 적재·운송 및 저장등에 관한 검사 및 승인		
전회 검사기관	기관명	검사완료일	
선 박	선명	선박번호 (제조번호)	
	선적항	총톤수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품명	규격·형식	
	제조번호	검사번호	
신청사유			
비 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에 따라 재검사(재검정, 재확인)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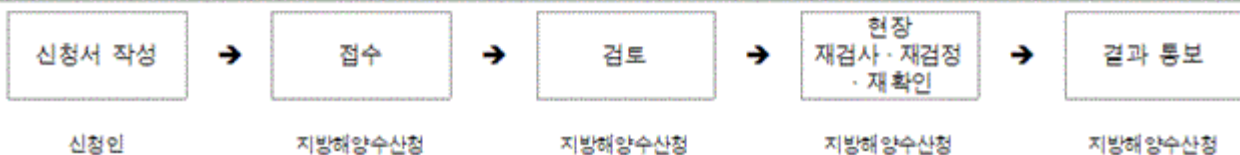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선박의 검사 등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박의 검사 등에 불복하는 자는 재검사 등을 거치지 않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처리절차



[별지 제85호서식]

선박결함신고서

신고자	① 성명			
	② 주소	(전화:)		
③ 선명		④ 선적항		
⑤ 선장		⑥ 선박회사		

⑦ 결함내용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5조제1항에 따라 위의 선박에 대한 결함을 신고합니다.

[별지 제86호서식]

선박결합신고기록부

[illegible]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재활용품)]

[illegible]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8호서식] <개정 2025. 12. 26.>

제 호			
출 항 정 지 명 령 서			
①선 박 명		②선 장 명	
③선 박 번 호		④국 적	
⑤총 톤 수		⑥선 종	
⑦입 항 일 자	년 월 일	⑧출항예정일자	년 월 일
⑨출항정지 사유			
⑩출항정지 기간 및 해제조건			
⑪비 고	출항정지 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출항할 수 있으니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해당 선박검사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항정지명령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인]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220g/m²]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 89호서식] <개정 2025. 12. 26.>

제 호 항 해 정 지 명 령 서			
①선 박 명		②선 장 명	
③선 박 번 호		④국 적	
⑤총 톤 수		⑥선 종	
⑦입 항 일 자	년 월 일	⑧출항예정일자	년 월 일
⑨항해정지 사유			
⑩항해정지 기간 및 해제조건			
⑪비 고	항해정지 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출항할 수 있으니 사유가 해소 되면 즉시 해당 선박검사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 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 니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6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항해정지명령서를 발급 합니다. 년 월 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인			

210mm × 297mm [보존용지(1종) 220g/m²]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 90호서식] <개정 2025. 12. 26.>

제 호			
시 정·보 완 명 령 서			
①선 박 명		②선 장 명	
③선 박 번 호		④국 적	
⑤총 톤 수		⑥선 종	
⑦입 항 일 자	년 월 일	⑧출항예정일자	년 월 일
⑨시정·보완 사유			
⑩시정·보완 기간 및 해제조건			
⑪비 고	시정·보완 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출항할 수 있으니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해당 선박검사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6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시정·보완명령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인]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220g/m²]



어선법

[시행 2025. 12. 17.] [법률 제21058호, 2025. 9. 16.,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어선) 051 - 773 - 5555, 5556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어선거래) 051 - 773 - 5513, 5514

제1장 총칙 <개정 2008. 3. 28.>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선의 건조·등록·설비·검사·거래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27., 2016. 12. 27.>
[전문개정 2008. 3. 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0. 31., 2019. 8. 27.>

1. “어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 가. 어업(「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이하 “수산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선박
 - 나.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 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조허가를 받아 건조 중이거나 건조한 선박
 - 라.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한 선박
 2. “개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어선의 길이·너비·깊이(이하 “주요치수”라 한다)를 변경하는 것
 - 나. 어선의 추진기관을 새로 설치하거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는 것
 - 다. 어선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어업의 종류를 변경할 목적으로 어선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는 것
 3. “만재흘수선(滿載吃水線)”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만재흘수선을 말한다.
 4. “복원성”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복원성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08. 3. 28.]

제3조(어선의 설비) 어선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선체
2. 기관
3. 배수설비

4. 돛대
5. 조타·계선·양묘설비
6. 전기설비
7. 어로·하역설비
8. 구멍·소방설비
9. 거주·위생설비
10. 냉동·냉장 및 수산물처리가공설비
11. 항해설비
12.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본조신설 2009. 5. 27.]

제3조의2(복원성 승인 및 유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복원성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낚시어선으로서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 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어선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복원성 계산을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용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복원성 계산방식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어선의 소유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복원성 기준에 따라 복원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어선의 소유자는 복원성에 관한 자료를 해당 어선의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복원성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선장은 해당 자료를 어선 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0. 31.]

제4조(만재출수선의 표시 등) ①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만재출수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를 받고 항행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만재출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17. 10. 31.>

-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표시된 만재출수선을 초과하여 사람, 어획물 또는 화물 등을 승선시키거나 싣고 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7. 10. 31., 2020. 2. 18.>

[본조신설 2009. 5. 27.]

[제목개정 2017. 10. 31.]

제5조(무선설비) ①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를 어선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

의 어선으로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에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무선설비는 「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② 제1항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춘 어선의 소유자는 안전운항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하는 경우 무선설비를 작동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3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선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행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항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10. 31.>

[본조신설 2009. 5. 27.]

제5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 ①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어선(「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이하 “어선위치발신장치”라 한다)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 출항·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12. 31.>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가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이를 분실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정상 작동하기 위한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31., 2020. 2. 18.>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는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1. 7. 14.]

제6조(국제협약 규정의 적용)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는 어선의 경우 그 협약의 규정이 이 법의 규정과 다를 때에는 해당 국제협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9. 5. 27.]

제2장 어선의 건조 <개정 2008. 3. 28.>

제7조 삭제 <1999. 2. 8.>

제8조(건조·개조의 허가 등) ①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려는 자 또는 어선의 건조·개조를 발주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건조·개조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총톤수 2톤 미만 어선의 개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3. 3. 23., 2013. 4. 5.>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3. 4. 5., 2019. 8. 27.>

1. 신청인이 하려는 어업에 대하여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수산자원의 증식·보호 등을 위한 어업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청인이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원양산업발전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면허어업·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청인이 이 법,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원양산업발전법」 및 「내수면어업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고 그 효력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외에 어선의 효율적 관리를 저해하는 중대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건조·개조허가를 받은 어선의 주요치수·성능 및 총톤수 등에 관하여 오차허용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오차허용범위 안의 어선에 대하여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8. 3. 28., 2013. 3. 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조·개조허가를 할 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08. 3. 28., 2013. 3. 23.>

⑤ 삭제<2013. 4. 5.>

[제목개정 2008. 3. 28.]

제9조(어선건조·개조업의 등록 등) ①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 또는 어선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수리행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리를 하는 사업(이하 “어선건조·개조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어선건조·개조업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2. 20.]

제9조의2(어선건조·개조업 등록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건조·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건조·개조업을 한 경우
 4.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를 받은 해당 어선의 선체·기관·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한 경우
 5.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에营业을 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어선건조·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어선건조·개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2. 20.]

제9조의3(어선건조·개조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건조·개조업자에 대하여 어선의 개발, 시설의 이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건조·개조 등에 관한 산업을 육성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어선건조·개조업 진흥단지로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어선건조·개조업 진흥단지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2. 20.]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조·개조허가를 받은 자나 어선건조·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조·개조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24. 12. 20.>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한 경우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선의 건조·개조의 중지,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1. 건조·개조허가를 받은 자나 어선건조·개조업자가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한 경우
 2. 어선건조·개조업자가 건조·개조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한 경우
- [전문개정 2008. 3. 28.]

제11조 삭제 <1999. 2. 8.>

제12조 삭제 <1999. 2. 8.>

제3장 어선의 등록 <개정 2008. 3. 28.>

제13조(어선의 등기와 등록) ① 어선의 소유자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어선이나 선박이 주로 입항·출항하는 항구 및 포구(이하 “선적항”이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원부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은 선박등기를 한 후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은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 : 선박국적증서

2.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은 제외한다) : 선적증서

3. 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 : 등록필증

④ 선적항의 지정과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3. 28.]

제13조의2(소형어선 소유권 변동의 효력)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 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본조신설 2008. 3. 28.]

제13조의3(압류등록) 시장·군수·구청장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거나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형어선의 어선원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고 선박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31., 2016. 12. 27.>

[본조신설 2008. 3. 28.]

제14조(어선의 총톤수 측정 등) ① 어선의 소유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선의 총톤수 측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의 수리 또는 개조로 인하여 총톤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총톤수의 재측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③ 어선의 소유자는 외국에서 취득한 어선을 외국에서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총톤수 측정이나 총톤수 재측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15조(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제1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이하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을 어선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 또는 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5. 27., 2013. 3. 23., 2019. 8. 27.>

[전문개정 2008. 3. 28.]

제16조(어선 명칭등의 표시와 번호판의 부착) ①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어선에 어선의 명칭, 선적항, 총톤수 및 흘수(吃水)의 치수 등(이하 “명칭등”이라 한다)을 표시하고 어선번호판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어선번호판의 제작과 부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어선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명칭등을 표시하고 어선번호판을 붙인 후가 아니면 그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7조(등록사항의 변경) 어선의 소유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3. 28.]

제18조(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3. 28.]

제19조(등록의 말소와 선박국적증서등의 반납)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어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어선의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어선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2.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멸실, 침몰, 해체 또는 노후, 파손 등의 사유로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6개월 이상 행방불명이 된 경우

②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선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며 그 어선의 소유자가 최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어선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1.>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어선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어선으로 영위하는 수산업의 허가·신고·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지난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간검사를 할 때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지정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어선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지난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어선의 소유자는 지체 없이 그 어선에 붙어 있는 어선번호판을 제거하고 14일 이내에 그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0조 삭제 <1999. 2. 8.>

제4장 어선의 검사 등 <개정 2009. 5. 27., 2017. 10. 31.>

제21조(어선의 검사) ① 어선의 소유자는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 제3조의2에 따른 복원성의 승인·유지 및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17. 10. 31.>

1. 정기검사
최초로 항행의 목적에 사용하는 때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행하는 정밀한 검사
2. 중간검사
정기검사와 다음의 정기검사와의 사이에 행하는 간단한 검사
3. 특별검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때 행하는 간단한 검사
4. 임시검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검사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행하는 검사
5. 임시항행검사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기 전에 어선을 임시로 항행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행하는
검사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및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에 대하여는 「
전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 10. 31.>

[본조신설 2009. 5. 27.]

제22조(건조검사 등) ① 어선을 건조하는 자는 제3조제1호、제2호、제3호、제5호、제6호의
설비와 제4조에 따른 만재흡수선에 대하여 각각 어선의 건조를 시작한 때부터 해양수산부장
관의 건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목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
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20. 2. 18.>

②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에 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를 할 경우 그 건조검사에서 합격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3조 각 호의 설비에 필요한 어선용품(이하 “어선용품”이라 한다) 중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어선용품을 제조、개조、수리 또는 정비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어선용품을
설치하여야 할 어선이 결정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예비검사”라 한다
)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④ 예비검사에 합격한 어선용품 및 「선박안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합격된
선박용품물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또는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중 최초
로 실시하는 검사를 할 경우 그 예비검사에서 합격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및 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다.<개정 2013. 3. 23.>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선박 등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선
박에 대하여 건조검사에 준하는 검사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이하 “별도건조검
사”라 한다)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9. 5. 27.]

제23조(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① 어선의 소유자는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또는 제
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별도건조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은 후 해당 어선의 선체、기관、
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체、기관、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
동、운영되도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② 어선건조、개조업자는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를 받은 해당 어선의 선체、기관、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
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4. 12. 20.>

[본조신설 2017. 10. 31.]

제24조(형식승인 및 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형

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어선 또는 어선용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해당 변경 부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이하 “형식승인시험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신설 2017. 10. 31.>

1.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시험기관

2. 「선박안전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정시험기관

④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건조·제조 또는 수입한 어선 또는 어선용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에 합격한 어선 또는 어선용품과 「선박안전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고 지정검정기관의 검정에 합격된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사를 할 경우 그 검정에서 합격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10. 31.>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검정, 변경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7. 10. 31.>

[본조신설 2009. 5. 27.]

제24조의2(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3. 제조 또는 수입한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이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안전법」 제75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효력 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0. 31.]

제24조의3(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시험기관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형식승인시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형식승인시험의 오차·실수·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시험의 실시를 거부한 경우
6.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효력 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0. 31.]

제25조(지정사업장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또는 제3조 각 호에 따른 설비를 건조·제조하거나 정비(개조 또는 수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업장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지정건조사업장·지정제조사업장 또는 지정정비사업장(이하 “지정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10. 3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건조·제조 또는 정비 규정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10. 31.>

③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이 제1항에 따른 지정건조사업장·지정제조사업장에서 건조·제조되고 제2항에 따른 건조·제조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건조·제조된 것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그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사를 할 경우 그 확인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10. 31.>

④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이 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장에서 정비되고 제2항에 따른 정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정비된 것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그 정비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제21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할 경우 그 확인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3. 4. 5., 2017. 10. 31.>

⑤ 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과 제2항에 따른 건조·제조 및 정비 규정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7. 10. 31.>

[본조신설 2009. 5. 27.]

[제목개정 2017. 10. 31.]

- 제26조(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건조·제조하거나 정비한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이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을 판매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을 건조·제조하거나 정비하지 아니한 경우
 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
 7.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안전법」 제75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지정사업장으로 지정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 지정의 취소·효력 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0. 31.]

- 제26조의2(하역설비의 확인 등)** ① 1톤 이상의 어획물 또는 화물 등의 하역에 사용하는 하역설비를 갖춘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의 소유자는 하역설비의 제한하중·제한각도 및 제한반지름(이하 “제한하중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2. 18.>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에 대하여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간검사를 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설비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을 받은 어선의 소유자는 확인받은 제한하중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하역설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의 제한하중등의 확인 기준, 절차 및 확인 사항의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0. 31.]

- 제27조(검사증서의 발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사증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0. 31.>

1.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어선의 종류·명칭·최대승선인원 및 만재흘수선의 표시 위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1의2.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간검사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된 경우로서 어선검사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이 기재된 어선검사증서
 2.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어선특별검사증서
 3.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임시항행검사증서
 4.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건조검사증서
 5. 제22조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예비검사증서
 - 5의2. 제22조제6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별도건조검사증서
 6.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정에 합격된 경우에는 검정증서
 7.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건조·제조확인증 또는 정비확인증
 8.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제한하중등 확인증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4호, 제5호, 제5호의2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증서·검정증서, 건조·제조·정비확인증 및 제한하중등 확인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해당 어선 또는 어선용품에 합격표시 또는 증인(證印)을 붙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10. 31.>
- [본조신설 2009. 5. 27.]

제28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 ①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기산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 ③ 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1.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해당 어선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있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어선이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새로운 어선검사증서를 즉시 교부할 수 없거나 어선에 비치하게 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어선검사증서는 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아야 할 어선이 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 합격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 [본조신설 2009. 5. 27.]

제29조(검사증서 등의 비치)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포함한다)를 어선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어업·허가어업·신고어업 또는 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19. 8. 27., 2025. 9. 16.>

[본조신설 2009. 5. 27.]

제30조(재검사의 신청) ① 제14조·제21조·제22조·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총톤수 측정·재측정, 검사·검정 및 확인(이하 이 조에서 “검사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검사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유를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사 등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가 해당 어선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9. 5. 27.]

제5장 어선 등의 거래 <신설 2016. 12. 27.>

제31조(어선거래시스템 등의 구축·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및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어선설비등”이라 한다)의 거래와 관련하여 어업인의 편의, 거래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선거래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선거래시스템(이하 “어선거래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와 관련한 정보를 해당 정보를 요청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소유자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제공하는 정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거래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1.>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등록, 제17조에 따른 어선의 변경등록 및 제19조에 따른 등록의 말소에 관한 정보
2.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에 관한 정보
3.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같은 법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른 어업의 허가,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어업의 신고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어선거래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거래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어선거래시스템의 관리·운영 및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및 어선설비등 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어선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1조의2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거래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에 따라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2. 27.]

제31조의2(어선중개업의 등록 등) 어선 및 어선설비등에 대한 매매 또는 임대차를 중개하는 사업(이하 “어선중개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제31조의9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의 가입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중개에 관한 교육의 이수. 이 경우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해당 법인에서 어선중개업을 하려는 자가 모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어선중개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본조신설 2016. 12. 27.]

제31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1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31.>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1조의4에 따라 어선중개업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본조신설 2016. 12. 27.]

제31조의4(어선중개업 등록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어선중개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선중개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어선중개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선중개업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의2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31조의2 각 호에 따른 어선중개업의 등록요건에 미달된 경우
3. 제31조의3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제31조의3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으로 교체 임명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제31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 또는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 사본을 3년 미만으로 보존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1조의8제1항에 따른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그 밖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6.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7.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7.]

제31조의5(휴업·폐업 등의 신고) 어선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어선중개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2.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
3. 휴업 후 영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
4.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16. 12. 27.]

제31조의6(과징금 처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1조의4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선중개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어선중개업의 영업정지가 어업인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7.]

제31조의7(어선중개업자에 대한 교육) 어선중개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와 해당 법인에서 어선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2. 27.]

제31조의8(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 어선중개업자는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어선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계약서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2. 27.]

제31조의9(보증보험 가입 등) ① 어선중개업자는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어선중개업자는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발급하거나 관계 증서에 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보장금액

2. 보장기간

3. 보증보험회사 및 그 소재지

③ 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의 가입금액, 가입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6. 12. 27.]

제6장 어선의 연구·개발 <개정 2008. 3. 28.>

제32조(어선의 조사·연구)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안전조업과 성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3. 28.]

제33조(표준어선형의 개발)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개량과 어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어업의 종류별로 표준어선형을 개발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3. 28.]

제7장 삭제 <1999. 2. 8.>

제34조 삭제 <1999. 2. 8.>

제35조 삭제 <1999. 2. 8.>

제36조 삭제 <1999. 2. 8.>

제8장 보칙 <개정 2008. 3. 28.>

제37조(다른 법령의 준용) ① 어선의 항행과 등록에 관하여 「선박법」 제2조, 제5조, 제9조제2항·제3항(대한민국 영사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

10조(선박국적증서나 가선박국적증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는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할 수 없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조(국기 게양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3조, 제26조(국기게양과 표시의 면제로 한정한다),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선박”은 “대한민국어선”으로,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선박취득지”는 “어선취득지”로, “선박관리인”은 “어선관리인”으로, “선박소유자”는 “어선소유자”로 본다. <개정 2008. 3. 28., 2014. 3. 24.>

② 어선의 검사와 그 밖의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선박안전법」 제6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제41조, 제44조, 제66조, 제69조 및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은 “어선”으로 본다. <신설 2009. 5. 27., 2013. 3. 23., 2017. 10. 31.>

③ 어선의 총톤수 측정에 관하여 「선박법」 제3조와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본다. <개정 2008. 3. 28.>
[제목개정 2008. 3. 28.]

제37조의2(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어선의 건조·개조·등록·설비·검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그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중개업자 및 어선건조·개조업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6.>
[본조신설 2016. 12. 27.]

제38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16. 12. 27., 2017. 10. 31., 2024. 12. 20.>

1.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의 취소
 - 1의2. 제10조에 따른 건조·개조허가의 취소, 어선의 건조·개조의 중지 명령 및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 명령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어선등록의 말소
 - 2의2.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 정지
 - 2의3.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효력 정지
 - 2의4.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또는 효력 정지
 3. 제31조의4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의 취소
 4. 제41조제8항에 따른 대행의 취소 또는 정지
- [전문개정 2008. 3. 28.]

제39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 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40조제

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총톤수의 측정·재측정 및 검사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 4. 5., 2016. 12. 27., 2017. 10. 31., 2020. 2. 18., 2025. 9. 16.>

1.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복원성 승인을 신청하는 자

1의2. 제8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건조·개조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1의3.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어선건조·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3. 제14조에 따라 어선의 총톤수 측정 또는 재측정을 신청하는 자

4. 제17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5. 제18조에 따라 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6. 제21조에 따라 어선검사를 신청하는 자

7.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조검사를 신청하는 자

8. 제22조제3항에 따라 예비검사를 신청하는 자

9. 제22조제6항에 따라 별도건조검사를 신청하는 자

10.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 및 검정을 신청하는 자

11.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11의2.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11의3.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의 제한하중등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12. 제28조제3항에 따라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13.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검사 등을 신청하는 자

13의2. 제31조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를 이용하려는 자

13의3. 제31조의2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14.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2조제1항·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제 협약검사·도면승인을 신청한 자

15. 제41조제3항에 따른 검사증서·검정증서·확인증 또는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등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②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2016. 12. 27.>

③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한 때에는 그 결정내용 및 산정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3. 4. 5., 2016. 12. 27.>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이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그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3. 4. 5., 2016. 12. 27.>

[전문개정 2008. 3. 28.]

제40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전문개정 2016. 12. 27.]

제41조(검사업무 등의 대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선급법인의 경우 제5호 및 제5호의2의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09. 5. 27., 2013. 3. 23., 2013. 4. 5., 2016. 12. 27., 2017. 10. 31., 2020. 2. 18.>

1.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의 복원성 승인
- 1의2. 제14조에 따른 어선의 총톤수 측정·재측정
2.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3. 제22조에 따른 어선의 건조검사, 어선용품의 예비검사 및 별도건조검사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선 또는 어선용품의 검정
5.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위한 조사
- 5의2.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확인
- 5의3. 제26조의2에 따른 제한하중등의 확인 및 하역설비검사기록부의 작성
6. 제28조제3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의 승인
7.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 가. 「선박안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
 - 나. 「선박안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면승인
 - 다. 「선박안전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운송·저장 등에 관한 검사·승인

② 삭제 <1999. 2. 8.>

③ 공단이나 선급법인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증서·검정증서·확인증 또는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국제톤수증서, 국제톤수확인서 및 재화중량톤수증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09. 5. 27., 2013. 3. 23.>

④ 공단이나 선급법인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8., 2013. 3. 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공단이나 선급법인이 보고한 대행업무에 대하여 그 처리내용을 확인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8., 2013. 3. 23.>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이 법에 따라 행한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신설 2009. 5. 27., 2013. 3. 23.>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신설 2009. 5. 27., 2013. 3. 23.>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신설 2017. 10. 31.>

[제목개정 2008. 3. 28., 2009. 5. 27.]

제41조의2(공단에 대한 경비의 보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어선 또는 어선설비에 관한 기술의 개발·보급, 대행업무 및 위탁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본조신설 2009. 5. 27.]

제42조(법정대리인의 의무) 제14조, 제16조제1항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서 어선의 소유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에 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3. 18., 2020. 2. 18.>

1. 어선의 총톤수 측정·재측정의 신청
2. 어선 명칭등의 표시와 어선번호판의 부착
3. 등록 사항의 변경 신청
4. 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 신청
5. 등록의 말소 신청에 따르는 소유자의 의무

[전문개정 2008. 3. 28.]

제9장 벌칙 <개정 2008. 3. 28.>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2. 20.>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조·개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건조·개조하거나 어선의 건조·개조를 발주한 자
- 1의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건조·개조업을 한 자
2.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을 어선으로 사용한 자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행업무 또는 발급업무를 한 자

[전문개정 2017. 10. 31.]

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7., 2016. 12. 27., 2017. 10. 31., 2024. 12. 20.>

1.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복원성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복원성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에 사용한 자

1의2.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자

3. 제16조에 따른 어선 명칭등의 표시 또는 어선번호판을 은폐·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4. 제21조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4의2. 제23조를 위반하여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별도건조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은 후 해당 어선의 선체·기관·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 그 변경승인 또는 검정을 받은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

7.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7의2.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만재흘수선의 표시 위치 등을 위반한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어선특별검사증서·임시항행검사증서·건조검사증서·예비검사증서·별도건조검사증서·건조확인증·제조확인증·정비확인증 또는 제한하중등 확인증을 발급받은 자

9. 제31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중개업을 한 자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의2에 따른 어선중개업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한 자

② 어선 승선원이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선장에게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45조 삭제 <1997. 12. 17.>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건조한 자

[전문개정 2009. 5. 27.]

제47조(벌칙) 제42조를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48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49조(벌칙의 준용) 어선에 대하여 「선박법」 제32조, 제33조제1항(같은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선박국적증서나 가선박국적증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4조, 제35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제3호·제4호와 「선박안전법」 제83조제2호(국제협약검사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14호, 제84조제1항제5호·제6호·제11호, 제85조제1호·제2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6조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선박원부”는 “어선원부”로, “선박소유자”는 “어선소유자”로, “선박관리인”은 “어선관리인”으로 본다. <개정 2009. 5. 27., 2017. 10. 31.>

[전문개정 2008. 3. 28.]

제50조(벌칙의 적용) 이 법(제37조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51조에서 같다)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어선소유자에게 적용할 벌칙(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의 벌칙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51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9. 5. 27.>

1. 어선을 공유한 경우로서 어선관리인을 둔 때에는 어선관리인
2. 어선 임차의 경우 어선임차인
3. 선장에게 적용할 벌칙은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

[전문개정 2008. 3. 28.]

제51조(벌칙 적용의 예외) 어선의 소유자가 국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인 경우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어선의 소유자에게 적용할 벌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4. 5.>
[전문개정 2008. 3. 28.]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발급하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3. 28.]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10. 31., 2020. 2. 18., 2024. 12. 20.>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사람, 어획물 또는 화물 등을 승선시키거나 신고 항행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 또는 분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고장 또는 분실 신고 후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건조·개조업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5. 27., 2011. 7. 14., 2016. 12. 27., 2017. 10. 31.>

1. 제3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복원성에 관한 자료를 선장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어선 안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 본문을 위반하여 선박국적증서등을 어선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자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의 명칭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어선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한 자
4. 제17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분실 등의 사유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7의2.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하역설비의 제한하중등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 7의3. 제2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하중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하역설비를 사용한 자
8. 제29조를 위반하여 어선검사증서, 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 안에 갖추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자
9. 제31조의5에 따른 어선중개업의 휴업, 폐업, 재개 또는 휴업기간 연장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의7에 따른 보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1. 제31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이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발급, 제공하지 아니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 징수한다. <개정 2011. 7. 14., 2014. 11. 19., 2016. 12. 27., 2017. 7. 26., 2017. 10. 31.>
1.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2항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
 2. 제1항제3호, 제4호의 경우: 해양경찰청장
- ④ 삭제 <2009. 5. 27.>
- ⑤ 삭제 <2009. 5. 27.>
- [전문개정 2008. 3. 28.]

부칙 <제4559호, 1993. 6.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어선설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어선설비등에관한규칙(農林水産部令第939號 1985・7・4 改正)”은 제3조,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청장의 고시일 전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어선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어선에 해당하게 되는 선박(水産業法の規定에 의하여許可、申告、免許漁業에 종사하고 있는船舶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선박의 소유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신고한 선박의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시,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보는 선박에 대하여 등록후 1월 이내에 등록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등록의 말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산업을 위한 허가, 신고, 면허등의 효력이 상실된 어선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어선등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건조, 개조중인 어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산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건조, 개조중인 선박으로서 당해 선박의 소유자 또는 당해 선박을 건조, 개조하는 자가 이 법 시행후 1월 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신고한 선박의 경우에는 제9조제2항 및 제43조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어선의 총톤수측정에 대한 특례) 1982년 12월 31일이전에 건조되었거나 개조에 착수된 어선의 소유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

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톤수의 개측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사법경찰관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어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확인공무원

제6조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제5조제25호에 제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어선법 제9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범죄

②해양오염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중 “ 어선법 제16조 ” 를 “ 어선법 제21조 ” 로 한다.

제32조제3호중 “ 어선법 제26조 ” 를 “ 어선법 제34조 ” 로 한다.

부칙 <제5131호, 1995. 12. 30.> (수산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 수산제조업 ” 을 “ 수산물가공업 ” 으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 <제5153호, 1996. 8. 8.>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 생략

<21> 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제12호, 제4조 본문, 제5조제1항 본문, 제7조, 제8조제1항 본문, 제3항 내지 제5항, 제9조제1항, 제3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 제14조제1항, 제2항, 제15조 단서, 제21조제1항 본문, 제4호, 제22조제1항 본문, 동조제2항, 제4항,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항, 제25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6조, 제27조제1항 본문, 동조제2항, 제30조, 제31조제6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2항, 제38조 본문, 제40조제1항, 제2항, 제41조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3항 내지 제5항, 제46조제3호, 제49조 후단, 제52조 및 제53조제2항 내지 제4항중 “ 수산청장 ” 을 각각 “ 해양수산부장관 ” 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 해운항만청장 ” 을 “ 해양수산부장관 ” 으로 한다.

제4조 단서, 제5조제1항 단서·제2항, 제8조제1항·제4항·제5항, 제13조제1항·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 단서,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1항 본문,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 본문·제3호, 제22조제1항·제4항·제6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1항·제5항, 제26조, 제28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제30조제1항, 제37조, 제39조 본문 및 제41조제4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22〉 내지 〈69〉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5453호, 1997. 12. 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 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454호, 1997. 12. 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 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470호, 1997. 12. 17.> (선박안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어선검사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어선법 제21조제1항·제22조·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어선의 검사, 제조검사, 예비검사, 형식승인, 검정, 우수건조·제조·정비사업장의 지정,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확인(이하 이 條에서 “漁船檢査등”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 및 ③ 생략

제7조 (어선설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어선법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설비, 만재흘수선의 표시 및 무선설비에 관한 기준은 이 법에 의한 선박시설등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고시가 시행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8조 생략

제9조 (한국어선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어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어선협회(이하 “漁船協會”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어선협회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이 포괄승계한다.

②이 법에 의한 기술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한 재산 및 물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어선협회의 명의로는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의 설립과 동시에 기술원의 명의로

본다.

③제1항의 경우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부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전에 어선협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이 행한 행위로 보며, 어선협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기술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당시의 어선협회의 임·직원은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어선협회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어선의 등록·검사 및 조사·연구”를 “어선의 등록 및 조사·연구”로,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향상”을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성능향상”으로 한다.

제3조 내지 제6조, 제21조 내지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제2항중 “어선의 등록·검사등”을 “어선의 등록등”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제39조제6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1조의 제목중 “검사”를 “총톤수측정”으로 하고,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중 “어선협회”를 각각 “기술원”으로 한다.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안전기술원(이하 “技術院”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총톤수측정·개측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

②시·도지사는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급법인으로 하여금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기술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안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國際噸數證書、國際噸數確認書 및 載貨重量噸數證書를 포함한다)를 교부할 수 있다.

제4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명칭등의 표시 또는 어선번호판을 은폐·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 (벌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48조중 “ 제43조 내지 제47조 ” 를 “ 제43조、제44조、제46조 및 제47조 ” 로 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 (벌칙의 준용) 선박법 제32조、제33조제1항(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船舶國籍證書 또는 假船舶國籍證書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大韓民國國旗를 揭揚한 경우에 한한다)、제34조、제35조、제36조제2호(同法 第13條第1項、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國際噸數證書를 비치、반환 또는 申告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은 어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선박원부”는 “어선원부”로, “선박소유자”는 “어선소유자”로, “선박관리인”은 “어선관리인”으로 본다.

제50조중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을 “선박법”으로 한다.

제51조중 “서울특별시、직할시、도、시、군、구”를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自治區를 말한다)”로 한다.

제52조중 “검사증서등을 교부하는 어선협회”를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교부하는 기술원”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내지 ⑤생략

부칙 <제5921호,1999. 2. 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방치어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는 방치된 어선의 관리 또는 제거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5호 및 제6조제20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5971호,1999. 4. 15.> (선박안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중 “한국선박안전기술원(이하 "技術院"이라 한다)”을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檢査協會"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기술원”을 “검사협회”로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중 “기술원”을 각각 “검사협회”로 한다.

제52조중 “기술원”을 “검사협회”로 한다.

부칙 <제5972호, 1999. 4. 15.> (선박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의 개정규정(同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새로 登錄의 대상이 되는 船舶의 登錄申請 및 이에 따른 船舶國籍證書交付의 경우에 한한다), 제2조제3호, 제26조의2의 개정규정(同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船舶籍證書交付의 대상이 되는 船舶의 船舶籍證書交付申請 및 이에 따른 船舶籍證書交付의 경우에 한한다) 및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전단중 “제14조、제21조, 제23조 내지 제25조, 제26조”를 “제26조”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선박”은 “대한민국어선”으로,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선박취득지”는 “어선취득지”로, “선박관리인”은 “어선관리인”으로, “선박소유자”는 “어선소유자”로 본다.

제37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본다.

제49조중 “제35조、제36조제2호(同法 第13條第1項、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國際噸數證書를 비치、반환 또는 申告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를 “제35조제1항、제35조제2항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부칙 <제6609호, 2002. 1. 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어선 건조、개조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한 어선 건조、개조허가 및 허가취소는 제8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어선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어선의 등록을 한 것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등록말소 신청에 관하여 행한 최고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어선번호판 등의 반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어선의 소유자중 어선번호판 및 선박국적증서 등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반납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8221호, 2007. 1. 3.> (선박안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중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檢査協會"라 한다)”를 “「선박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동법 제8조제2항”을 “동법 제60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중 “검사협회”를 각각 “공단”으로 한다.

⑥ 내지 ⑧ 생략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 、 <생략> 、 、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66> 까지 생략

<667>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 전단,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2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4항·제5항, 제13조제1항 전단 및 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 단서,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1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본문 중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66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007호, 2008. 3.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와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6호 중 “ 제2조제1항 각 호 ” 를 “ 제2조제1호 각 목 ” 으로 한다.

② 소형선박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 제2조제1항 각 호 ” 를 “ 제2조제1호 각 목 ” 으로 한다.

③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 제2조제1항제4호 ” 를 “ 제2조제1호라목 ” 으로 한다.

부칙 <제9718호, 2009. 5.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선용품의 형식승인 및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선박안전법」 제20조에 따른 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조·정비한 어선용품의 확인업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어선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선박안전법」 제7조제1항·제8조제1항·제9조제1항·제10조제1항·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제18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어선을 대상으로 행한 건조검사, 선박검사, 예비검사, 형식승인, 검정, 우수건조·제조·정비사업장의 지정,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의 확인은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선박검사증서가 발급된 어선의 검사에 관하여는 그 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신청된 어선에 대한 선박의 검사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어선설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선박안전법」 제26조·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어선에 대한 선박시설, 만재흡수선의 표시 및 무선설비에 관한 기준은 이 법에 따른 어선설비기준 등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고시가 시행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5조(선급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선급법인은 이 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219호, 2010. 3. 31.> (지방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2(까지 생략

3)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 중 “ 「지방세법」 ”을 “ 「지방세기본법」 ”으로 한다.

3!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0847호,2011. 7. 1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0호,2013. 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4>까지 생략

<315>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본문, 제5조제1항 본문, 제5조의2제1항 본문,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제2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0조,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41조의2 및 제52조 중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물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2호, 제4조 단서, 제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조의2제1항 본문,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 단서,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항 제3호, 제2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24조제4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9조 단서, 제30조제1항, 제39조제1항 본문 및 제41조제4항 중 “농림수산물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물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물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후단 중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령“은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를 “이 경우”로 한다.

<31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754호,2013. 4.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검사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확인된 부분에 대한 임시검사의 생략은 이 법 시행 후 임시검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482호,2014. 3.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 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537호,2014. 3. 24.> (선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전단 중 “ 제9조제2항、제3항 ” 을 “ 제9조제2항、제3항(대한민국 영사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으로 한다.

부칙 <제12844호,2014. 11. 1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3>까지 생략

<234>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제5항 및 제53조제2항제1호 중 “ 해양경찰청장 ” 을 각각 “ 국민안전처장관 ” 으로 한다.

<23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476호, 2016. 12. 27.> (지방세징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 까지 생략

3#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 중 “ 「지방세기본법」 ”을 “ 「지방세징수법」 ”으로 한다.

3\$ 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510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선중개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어선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1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4>까지 생략

<245>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40조제1항 및 제53조제2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4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008호, 2017. 10.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원성에 관한 자료의 비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항하는 어선부터 적용한다.

제3조(어선의 등록 말소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어선의 소유자에 대한 제19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1년의 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형식승인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후 제24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24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2년 이상의 기간은 이 법 시행 후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아니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5조(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사업장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후 제26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2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1년 이상의 기간은 이 법 시행 후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을 건조·제조하거나 정비하지 아니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6조(우수건조사업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건조사업장, 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은 각각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정건조사업장, 지정제조사업장 또는 지정정비사업장으로 본다.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6157호, 2018. 12. 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60호, 2018. 12. 3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6568호, 2019. 8. 27.> (양식산업발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 까지 생략

3*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어업”을 “어업(「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수산업법」”을 각각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15조 단서 및 제29조 단서 중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 어업·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를 각각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어업·허가어업·신고어업 또는 양식업에”로 한다.

3(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7042호, 2020. 2.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55호, 2022. 1. 11.> (수산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같은 법 제41조 및 제42조”를 “같은 법 제40조 및 제43조”로, “같은 법 제47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후단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수산업법」 제69조”로 한다.

1& 부터 3% 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 <제20601호, 2024. 12.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선건조·개조업의 등록 및 허가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어선건조·개조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건조·개조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어선건조·개조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건조·개조업을 영위하는 자는 그 등록 전에도 제10조의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는 어선건조·개조업자로 본다.

부칙 <제21058호, 2025. 9. 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0601호 어선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의2제2항 및 제39조제1항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어선법 시행령

[시행 2025. 12. 21.] [대통령령 제35915호, 2025. 12. 16.,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어선) 051 - 773 - 5555, 5556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어선거래) 051 - 773 - 5513, 5514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25.>

제1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등) 「어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15일을 말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번만 15일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4. 24.]

제1조의3(어선건조·개조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선건조·개조업(이하 “어선건조·개조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체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3. 어선건조·개조업의 종류(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선건조사업, 어선개조사업 또는 어선수리사업을 말한다)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
4. 건조, 개조 또는 수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수리를 말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어선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
 - 가. 선체의 재질이 강화플라스틱재인 어선
 - 나. 선체의 재질이 알루미늄합금재인 어선
 - 다. 선체의 재질이 강재(鋼材)인 어선
 - 라. 선체의 재질이 목재인 어선

[본조신설 2025. 12. 16.]

제2조(소형어선에 대한 압류등록)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소형어선에 대한 압류등록을 촉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어선원부에 채권자, 채권액, 촉탁기관 및 촉탁일 등을 적는 방법으로 압류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3. 27., 2017. 6. 27., 2018. 4. 24.>

[본조신설 2008. 6. 25.]

제3조 삭제 <1999. 4. 7.>

제4조(직권등록말소의 예외) 법 제19조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수산업의 허가·신고·면허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해당 어선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경우는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원양산업발전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로 한다. <개정 1999. 4. 7., 2002. 6. 3., 2008. 6. 25., 2017. 3. 27., 2017. 6. 27., 2020. 8. 26.>

제4조의2(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식승인 대상이 되는 법 제3조 각 호의 설비에 필요한 어선용물건(이하 “어선용품”이라 한다) 또는 소형어선에 대한 법 제24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이하 “형식승인시험”이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있을 것
2. 형식승인시험 대상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직접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제조자에게 해당 제품(제품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납품하는 자가 아닐 것
3.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국가표준기본법」 또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정·검정을 받은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4. 형식승인시험의 특정 시험항목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형식승인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3호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의 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2. 형식승인시험의 시험항목 일부를 해당 시험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춘 다른 시험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8. 4. 24.]

제5조(어선중개업의 등록요건) 법 제31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건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하며, 이하 “건축물대장”이라 한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한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 6. 27.]

제6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5. 12. 16.>

[본조신설 2017. 6. 27.]

- 제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문서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 ③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통지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6. 27.]

제8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어선중개업자”라 한다)는 법 제31조의8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거래당사자의 성명 등 인적 사항
2. 거래대상물[어선 및 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법 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어선설비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표시
3. 계약일
4.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5. 거래대상물의 인도일시
6. 권리이전의 내용
7.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8. 중개수수료、경비 등에 관한 사항
9.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중개수수료、경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10.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11. 어선중개업자가 거래대상물에 대하여 확인한 사항
12. 그 밖의 약정내용

[본조신설 2017. 6. 27.]

제9조(보증보험의 가입금액) 법 제31조의9제1항에 따라 어선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어선중개업자가 법인인 경우: 2억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1억원 이상을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2. 어선중개업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1억원 이상

[본조신설 2017. 6. 27.]

제10조(보증보험금의 지급 청구)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거래당사자가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보증보험회사에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거래당사자와 어선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또는 화해조서
2.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17. 6. 27.]

제11조 삭제 <1999. 4. 7.>

제12조 삭제 <1999. 4. 7.>

제13조 삭제 <1999. 4. 7.>

제14조 삭제 <1999. 4. 7.>

제15조 삭제 <1999. 4. 7.>

제16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어업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 11. 17., 2025. 12. 16.>

1. 법 제9조제1항、제3항에 따른 어선건조、개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 1의2.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건조、개조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 1의3. 법 제31조의2에 따른 어선중개업의 등록、변경등록(법 제31조의9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확인을 포함한다)
2. 법 제31조의4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3. 법 제31조의5에 따른 어선중개업 휴업、폐업 등의 신고 접수
4. 법 제31조의6에 따른 과징금 부과、징수
- 4의2.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안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출항정지 명령
5. 법 제38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청문
6. 삭제 <2018. 4. 24.>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 7. 26., 2018. 4. 24.>

1.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이를 분실한 경우의 신고 접수
2. 법 제53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8. 4. 24., 2019. 6. 11., 2025. 12. 16.>

1.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 중 어선의 개발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 1의2.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지원 중 선정된 어선건조·개조업 진흥단지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
 - 1의3. 법 제3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어선거래시스템의 관리·운영
 2.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3.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거래에 관한 정보 요청
 4.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요청에 한정한다)
- ④ 어업관리단장 및 공단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반기별로 종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신설 2020. 11. 17.>
[본조신설 2017. 6. 27.]

제16조의2(대행업무의 정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제8항에 따라 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별표 1의3에 따라 해당 업무의 대행을 6개월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6.>
[본조신설 2018. 4. 24.]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제1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1조에 따른 어선거래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2. 법 제31조의2에 따른 어선중개업의 등록·변경등록(법 제31조의9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확인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3. 법 제31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31조의4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사무
5. 법 제31조의5에 따른 어선중개업 휴업·폐업 등의 신고 접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31조의6에 따른 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7. 법 제38조제3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② 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어선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에 따른 어선의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어선등록의 말소에 관한 사무
4. 법 제38조제2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7. 6. 27.]

제18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7.>

[본조신설 2014. 12. 9.]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6. 27.>

[전문개정 2008. 6. 25.]

부칙 <제14090호, 1993.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차어선의 등록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법 제34조제2항 및 이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이 되는 어선에 대하여 이 영 시행후 6월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선박직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의 3. 통신부의 승무기준중 어선(무선전신시설을 설비한 선박에 한한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어선(무선전신시설을 | 총톤수 500톤미만의 선박 | 통신장 | 3급통신사 |

| 설비한 선박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톤수 500톤이상 2만톤미 | 통신장 | 2급통신사 |

| | 만의 선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톤수 2만톤이상의 선박 | 통신장 | 1급통신사 |

| | | (외국선박은 |

| | | 2급통신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전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중 “선박안전법 제4조제1항”을 “어선법제5조제1항 및 선박안전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5]의 제3종국의 대상선박란중 “제2종 또는 제3종의 종업제한을 가진 어선”을 “어선”으로 한다.

[별표6]의 어선의 항행구역란중 “제2종 또는 제3종 종업제한이 있는 어선”을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13673호, 전파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4조의 표중 어선의 항행구역란중 “제2종 또는 제3종 종업제한을 가진 어선”을 삭제한다.

부칙 <제15135호, 1996. 8. 8.>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4% 생략

4^ 어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14조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제6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 제13조제3호, 제14조, 제18조 및 제19조제1항중 “수산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4& 내지 <116>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5447호, 1997. 7. 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5598호, 1997. 12. 31.>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30호, 1998. 7. 1.> (선박안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어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내지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임차어선에 대한 법적용)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한 어선에 대하여 법을 적용할 사항은 법 제11조, 법 제13조(등록부분에 한한다), 법 제14조, 법 제15조, 법 제18조 내지 제20조, 법 제35조, 법 제37조제1항·제3항, 법 제38조제2호, 법 제39조제2호 내지 제5호, 법 제42조, 법 제47조제5호·제6호, 법 제48조 내지 제50조, 법 제53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 법 제53조제2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한다.

제18조제5호중 “법 제53조제1항제1호·제7호 및 제8호”를 “법 제53조제1항제1호”로 한다.

별표의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표의 비고중 “제7호”를 “제6호”로 한다.

⑨내지 ⑪생략

부칙 <제16226호,1999. 4.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23호,2002. 6. 3.>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권한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권한의 소관이 변경된 경우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직권등록말소 등 권한을 가진 자의 행위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한 권한을 가진 자의 행위로 본다.

부칙 <제18312호,2004. 3. 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77호,2008. 2. 29.>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3* 까지 생략

3(어선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4)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 <제20867호,2008. 6.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03호,2009. 11. 2.>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49호,2012. 3. 2.>

이 영은 201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55호,2013. 3. 2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어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을 “ 해양수산부장관 ” 으로 한다.

<53>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제24777호,2013. 9.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40호,2014. 12. 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7960호,2017. 3. 27.>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
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8167호,2017. 6. 27.>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9>까지 생략

<320> 어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321>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833호, 2018. 4.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제2호라목부터 사목까지 및 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차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9849호, 2019. 6. 1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어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30977호, 2020. 8. 26.>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 까지 생략

2@ 어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 「수산업법」 ”을 “ 「수산업법」 、 「양식산업발전법」 ”으로 한다.

2# 부터3&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1164호,2020. 11.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34호,2023. 4. 25.>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3913호,2023. 12. 12.>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15호,2025. 12. 16.>

이 영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어선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5. 12. 16.>

어선건조·개조업의 등록기준(제1조의3제1항 관련)

1. 시설기준

가. 어선의 건조, 개조 또는 수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수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필요한 작업장을 제1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어선의 종류에 맞게 갖추어 것

나. 어선의 건조, 개조 또는 수리에 필요한 장비, 부품 및 재료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것

2. 장비기준

가. 선체의 재질이 강화플라스틱재인 어선의 경우

1) 선체의 건조에 필요한 형틀을 갖추어 것(어선을 건조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강화플라스틱재의 재료로 사용되는 유리섬유를 재단하기 위한 장비를 갖추어 것

3) 2)에 따른 유리섬유의 적층(積層)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것

4) 강화플라스틱재의 가공 및 절단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것

나. 선체의 재질이 알루미늄합금재 또는 강재인 어선의 경우

1) 알루미늄합금재 또는 강재의 조립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것

2) 알루미늄합금재 또는 강재의 가공 및 절단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것

다. 선체의 재질이 목재인 어선의 경우: 목재의 가공 및 절단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것

3. 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이 경우 어선건조·개조업을 하려는 기관·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보유 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조선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선박의 건조, 개조 또는 수리에 관한 업무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3급 이상의 해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선박의 건조, 개조 또는 수리에 관한 업무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1년 이상인 사람

다.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또는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라. 선박의 건조, 개조 또는 수리에 관한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비고: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기준 및 장비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어선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5. 12. 16.>

과징금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징금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징금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사업자의 사업 규모, 사업구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징금 금액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31조의2 각 호에 따른 어선중개업의 등록요건에 미달된 경우 | 법 제31조의4 제1항제2호 | 150 | 450 | 900 |

| | | | | |
|--|-----------------|-----|-----|-----|
| 나. 법 제31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 또는 발급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 사본을 3년 미만으로 보존하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의4 제1항제4호 | 150 | 450 | 900 |
| 다. 법 제31조의8제1항에 따른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그 밖에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법 제31조의4 제1항제5호 | 150 | 450 | 900 |
| 라.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 법 제31조의4 제1항제6호 | 150 | 450 | 900 |

대행업무 정지처분의 기준(제16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 가. 대행업무 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가중 사유 또는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대행업무 정지처분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가중 사유

-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해당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라)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 마) 그 밖에 해당 업무에 대한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를 수행한 경우 | 법 제41조제8항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 어선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2. 1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제2호아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금액의 상한은 각각 100만원으로 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바.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3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복원성에 관한 자료를 선장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어선안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3조제2항 제1호 | 25 | 50 | 100 |
| 나.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만재 출수선을 초과하여 사람, 어획물 또는 화물 등을 승선 또는 적재하고 항행한 경우 | 법 제53조제1항 제1호 | 100 | 200 | 300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작동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3조제1항 제2호 | 100 | 200 | 300 |
|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5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3조제1항 제3호 | 100 | 200 | 300 |
|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 또는 분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고장 또는 분실 신고 후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3조제1항 제4호 | 100 | 200 | 300 |
| 바.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어선건조·개조업을 한 경우 | 법 제53조제1항 제5호 | 100 | 200 | 300 |
| 사. 법 제15조 본문을 위반하여 선박국적증서등을 어선에 갖추어 두지 않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경우 | 법 제53조제2항 제2호 | 25 | 50 | 100 |
| 아.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 | 법 제53조제2항 | 25 | 50 | 100 |

| | | | | |
|---|--------------------|----|----|-----|
| 선의 명칭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어선번호판을 붙이지 않은 경우 | 제3호 | | | |
| 자. 법 제17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
청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3조제2항
제4호 | | | |
| 1) 10일 이내의 기간이 지난 때 | | | 5 | |
| 2)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5만원
에 추가하여 1일을 초과할 때마
다 | | | 1 | |
| 차.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3조제2항
제5호 | | | |
| 1) 10일 이내의 기간이 지난 때 | | | 5 | |
| 2)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5만원
에 추가하여 1일을 초과할 때마
다 | | | 1 | |
| 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9조제3
항에 따른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
증서등을 반납하지 않거나 분실
등의 사유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3조제2항
제6호 | | | |
| 1) 10일 이내의 기간이 지난 때 | | | 5 | |
| 2)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5만원
에 추가하여 1일을 초과할 때마
다 | | | 1 | |
| 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1조제1
항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53조제2항
제7호 | | | |
| 1) 10일 이내의 기간이 지난 때 | | | 5 | |
| 2)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5만원
에 추가하여 1일을 초과할 때마
다 | | | 1 | |
| 파. 법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하역설비의 제한하중등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53조제2항
제7호의2 | 25 | 50 | 100 |
| 하. 법 제2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하중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하
역설비를 사용한 경우 | 법 제53조제2항
제7호의3 | 25 | 50 | 100 |
| 거.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어선검사
증서·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
항행검사증서를 어선 안에 갖추지
않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
한 경우 | 법 제53조제1항
제8호 | 25 | 50 | 100 |
| 너. 법 제31조의5에 따른 어선중개업
의 휴업·폐업·재개 또는 휴업기
간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3조제2항
제9호 | | | |
| 1) 휴업한 날, 폐업한 날, 재개한
날 | | | 20 | |

| | | |
|--|----------------|-----|
| 날 또는 휴업기간 만료일(이하 "휴업일등"이라 한다)부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 | | |
| 2) 휴업일등부터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 | | 50 |
| 3) 휴업일등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난 경우 | | 100 |
| 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의7에 따른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53조제2항 제10호 | |
|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하는 날(이하 "교육일"이라 한다)부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 | | 20 |
| 2) 교육일부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 | | 30 |
| 3) 교육일부터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 | | 50 |
| 4) 교육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난 경우 | | 100 |
| 러. 법 제31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이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발급·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3조제2항 제11호 | |
| 1) 어선중개업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 | 30 |
| 2) 어선중개업자가 법인인 경우 | | 70 |



어선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26.] [해양수산부령 제774호, 2025. 12. 26.,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어선) 051 - 773 - 5555, 5556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어선거래) 051 - 773 - 5513, 55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7. 8., 2009. 12. 14., 2018. 5. 1., 2020. 9. 3.>

1. “배의 길이”란 최소 형깊이(「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형깊이와 같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85퍼센트에 있어서의 계획만재흘수선에 평행한 흘수선 전 길이의 96퍼센트 또는 그 흘수선에 있어서 선수재의 전면으로부터 타두재의 중심까지의 길이중 큰 것을 말한다. 다만, 상갑판 보의 상면의 선수재 전면으로부터 선미외판 후면까지의 수평거리(이하 “측정길이”라 한다)가 24미터미만인 어선에 있어서는 상갑판 보의 상면에서 선수재 전면으로부터 타주가 있는 경우에는 타주의 후면까지, 타주가 없는 경우에는 타두재의 중심까지의 수평거리를 말한다.
2. “배의 깊이”란 배의 길이의 중앙에 있어서의 형깊이를 말한다.
3. “배의 너비”란 금속재외판이 있는 어선의 경우에는 배의 길이의 중앙에서 늑골외면간의 최대너비를 말하고, 금속재외판 외의 외판이 있는 어선의 경우에는 배의 길이의 중앙에서 선체외면간의 최대너비를 말한다.
4. 삭제<2018. 5. 1.>
5. “동력어선”이란 추진기관[선외기(船外機)]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한 어선을 말한다.
6. “무동력어선”이란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어선을 말한다.
7. “선령”이란 어선이 진수한 날부터 지난 기간을 말한다.
8. “검사기준일”이란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해마다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9. “국제항해”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이르는 해양을 항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나라가 국제관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지역 또는 국제연합이 시정권자인 지역은 별개의 나라로 본다.
10. “도면”이란 설계도, 사양서, 계산서, 표, 자료 등 어선의 치수, 형상 및 성능 등을 나타내는 서류를 말한다.

제3조(신청·신고등의 의무자) ①이 규칙에 의한 신청서·신고서 등 그 밖의 서류의 제출과 증서·증명서의 반환은 어선의 소유자(어선관리인 또는 어선임차인을 포함하며,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소유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로서 「어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어선의 총톤수 측정·재측정의 신청 등의 의무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선장이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유자 또는 선장은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5. 17., 2008. 7. 8., 2014. 12. 31., 2020. 9. 3.>

②제1항 단서에 따라 대리인이 신청등을 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8.>

제3조의2(복원성 승인) ① 법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최초로 항행의 목적에 사용하는 어선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2. 배의 길이의 변경으로 법 제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어선을 법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낚시어선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최초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
4. 복원성 승인을 받은 후 복원성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만, 별표 1에 따른 복원성 승인 면제 대상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원성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도면승인신청서에 별표 6에 따른 검사종류별 관련 도면 중 복원성에 관한 도면 3부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도면이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복원성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별표 7의 증인(證印)을 해당 도면의 적절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5. 1.]

제2장 어선의 건조·개조 등의 허가 등 <개정 2025. 12. 19.>

제4조(건조·개조 등의 허가구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건조·개조 또는 건조발주·개조발주의 허가권자(그 변경허가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 7. 15., 2008. 2. 4., 2008. 2. 27., 2008. 3. 3., 2008. 7. 8., 2009. 12. 14., 2013. 3. 24., 2013. 10. 30., 2020. 8. 28., 2023. 2. 3.>

1. 해양수산부장관

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에 사용할 어선

나. 「수산업법」 제4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험어업, 연구어업 또는 교습어업에 사용할 어선

다.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외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할 수산물운반선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에 관한 기술보급, 시험, 조사 또는 지도, 감독에 사용할 어선
 마.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험양식업, 연구양식업 또는 교
 습양식업에 사용할 어선

2.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 한다)

제1호 각 목의 어선을 제외한 어선

[전문개정 2001. 12. 31.]

제5조(건조·개조등의 허가신청)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건조, 개조 및 건조, 개조발
 주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의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건조, 개조 및
 건조, 개조발주의 허가 또는 동 허가의 변경허가(이하 “건조, 개조등의 허가”라 한다)의
 허가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 24., 1999. 5. 17., 2001. 12. 31., 2002. 7. 15., 2004. 8. 7., 2008. 3. 3., 2008. 7. 8., 2013. 3.
 24.>

1. 어선의 소유자
2. 삭제 <1999. 5. 17.>
3. 선적항
4. 어업의 종류
5. 주요치수
6. 총톤수
7. 추진기관
8. 그 밖의 설비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선의 건조, 개조 또는 건조, 개조발주의 허
 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서를 각각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
 정 1998. 1. 24., 1999. 5. 17., 2002. 7. 15., 2008. 3. 3., 2013. 3. 24.>

제6조(건조·개조등의 허가 면제) 법 제8조제1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 12. 31., 2008. 3. 3., 2008.
 7. 8., 2009. 12. 14., 2011. 3. 30., 2013. 3. 24.>

1. 총톤수 2톤미만의 어선을 개조하거나 개조의 발주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총톤수 2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
 업에 사용하는 어선을 개조하거나 개조의 발주를 하려는 경우

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기 위하여 어선을 개조하거나 개조의 발주를 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1999. 5. 17.]

제7조(건조·개조등의 허가조건)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어선의 건조·개조등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1998. 1. 24., 2002. 7. 15., 2008. 3. 3., 2008. 7. 8., 2013. 3. 24.>

1. 건조 또는 개조하는 어선의 건조 또는 개조공사의 착공시기에 관한 사항
2. 피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사항(건조·건조발주의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1999. 5. 17.>

② 삭제 <2013. 10. 30.>

[제목개정 2025. 12. 19.]

제8조(등록 대상 수리업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에서 “어선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수리행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리를 하는 사업”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어선의 선체에 대하여 수리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 12. 19.]

제9조(어선건조·개조업의 등록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어선건조·개조업(이하 “어선건조·개조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신청서에 「어선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시설·장비·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어업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어선건조·개조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어선건조·개조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어업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증
2.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어선건조·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어업관리단장은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이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8호서식의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어업관리단장은 제3항에 따라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어선건조·개조업 등록대장에 해당 내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19.]

제10조(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5. 12. 19.]

제11조(어선건조·개조업 진흥단지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어선건조·개조업 진흥단지로 선정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어선건조·개조업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어선건조·개조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공급하는 자가 집적되어 있거나 집적될 가능성이 큰 지역일 것
 2. 어선의 건조·개조 등에 관한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지역일 것
 3. 지역의 주요 산업과 연계하여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일 것
 4. 교통, 상하수도, 전기 및 통신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지역일 것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어선건조·개조업 진흥단지를 선정하려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어선건조·개조업 진흥단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어선건조·개조업 진흥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을 고시해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선건조·개조업 진흥단지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5. 12. 19.]

제3장 어선의 톤수측정 및 등록

제1절 어선의 톤수측정

제12조(총톤수 측정 또는 재측정의 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선의 총톤수 측정 또는 재측정(이하 “총톤수의 측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어선 총톤수 측정·재측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한민국 영사(이하 “영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측정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도면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 24., 1998. 9. 5., 2008. 3. 3., 2008. 7. 8., 2009. 12. 14., 2013. 3. 24., 2020. 9. 3.>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
 3. 중앙횡단면도
 4. 강재배치도 또는 재료배치도
 5. 상부구조도
 6. 삭제 <2014. 12. 31.>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총톤수의 측정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조선지·조선자·진수일 및 선박의 원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 1. 24., 2008. 3. 3., 2008. 7. 8., 2013. 3. 24.>

③제1항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등을 신청한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가 이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8. 1. 24., 2008. 3. 3., 2008. 7. 8., 2013. 3. 24.>
[제목개정 2020. 9. 3.]

제13조 삭제 <2009. 12. 14.>

제14조(총톤수의 측정등)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어선에 출입하여 총톤수의 측정등을 하게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총톤수계산서(이하 “총톤수계산서”라 한다) 및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 24., 2008. 3. 3., 2008. 7. 8., 2013. 3. 24.>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선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정부 또는 국내외의 공인된 선박검사기관의 총톤수의 측정등을 받은 것으로서 새로이 총톤수의 측정등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총톤수의 측정등을 하지 아니하고 총톤수계산서 및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8. 1. 24., 2008. 3. 3., 2008. 7. 8., 2013. 3. 24., 2014. 12. 31.>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국내외의 공인된 선박검사기관에 총톤수의 측정등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1998. 1. 24., 2008. 3. 3., 2013. 3. 24.>

④ 총톤수、순톤수、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09. 12. 14., 2013. 3. 24., 2020. 9. 3.>

제15조(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의 발급 등)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4조에 따라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 24., 2008. 3. 3., 2008. 7. 8., 2013. 3. 24.>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총톤수의 재측정을 한 결과 이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해야 할 사항을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1998. 1. 24., 2008. 3. 3., 2013. 3. 24., 2020. 9. 3.>

③영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등을 한 때에는 총톤수의 측정등에 관한 서류를 지체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 1. 24., 2008. 3. 3., 2008. 7. 8., 2013. 3. 24.>

[제목개정 2008. 7. 8.]

제16조 삭제 <2014. 12. 31.>

제17조(국제톤수증서등의 발급신청 등)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법」 제13조에 따라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 1. 24., 2008. 3. 3., 2008. 7. 8., 2009. 12. 14., 2013. 3. 24., 2020. 9. 3.>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
 3. 중앙횡단면도
 4. 강재배치도 또는 재료배치도
 5. 상부구조도
 6. 삭제<2014. 12. 31.>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어선에 출입하여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을 하게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국제톤수계산서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국제톤수증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국제톤수확인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개정 1998. 1. 24., 2008. 3. 3., 2008. 7. 8., 2013. 3. 24., 2020. 9. 3.>
- ③제14조제1항에 따른 총톤수의 측정등을 받은 어선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을 할 때에는 총톤수의 측정등에 사용한 수치를 적용해야 한다.<개정 2008. 7. 8., 2020. 9. 3.>
-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을 한 때에는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개정 1998. 1. 24., 2008. 3. 3., 2008. 7. 8., 2013. 3. 24., 2020. 9. 3.>
- ⑤국제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의 생략 및 위축과 서류송부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제3항 및 제15조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08. 7. 8., 2020. 9. 3.>
- [제목개정 2008. 7. 8.]

제18조(재화중량톤수증서의 발급신청) ①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법」 제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 24., 2008. 3. 3., 2008. 7. 8., 2009. 12. 14., 2013. 3. 24.>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
 3. 중앙횡단면도
 4. 배수량등 배의 성능에 관한 곡선도 또는 표(이하 “배수량등곡선도”라 한다)
-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어선에 출입하여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을 하게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계산서 및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개정 1998. 1. 24., 2008. 3. 3., 2008. 7. 8., 2013. 3. 24., 2020. 9. 3.>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을 한 때에는 재화중량톤수 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개정 1998. 1. 24., 2008. 3. 3., 2008. 7. 8., 2013. 3. 24., 2020. 9. 3.>

④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의 생략 및 위촉과 서류송부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제3항 및 제15조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08. 7. 8., 2020. 9. 3.>

[제목개정 2008. 7. 8.]

제19조 삭제 <2008. 7. 8.>

제20조 삭제 <2009. 12. 14.>

제2절 어선의 등록

제21조(등록의 신청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어선등록신청서·어선변경등록신청서 또는 어업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의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허가를 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 1. 24., 1998. 9. 5., 1999. 5. 17., 2001. 12. 31., 2002. 7. 15., 2008. 7. 8., 2012. 6. 7.>

1.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제2항에 따른 선박의 경우에는 수산업 또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할 수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2.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3. 선박등기부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에 따른 선박등기 대상인 어선에 한한다)

4. 삭제<1999. 5. 17.>

5. 삭제<2002. 7. 15.>

6. 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서류(어선을 대체하기 위하여 건조 또는 건조발주한 경우에만 한한다)

7. 삭제<2008. 7. 8.>

②법 제13조제1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어선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을 말한다.<개정 1998. 1. 24., 1999. 5. 17., 2000. 1. 6., 2008. 3. 3., 2008. 7. 8., 2013. 3. 24.>

1. 법 제19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선박

2. 「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선박

3. 삭제<2008. 7. 8.>

4. 외국에서 수입한 선박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어선의 등록을 한 때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어선규모에 따라 제33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이하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

)을 신청인에게 발급함과 동시에 별표 1의3에 따른 어선번호부여방법에 따라 어선번호를 부여하여 어선번호판을 제작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2. 7. 15., 2008. 7. 8., 2018. 5. 1., 2025. 12. 19.>

제22조(선적항의 지정등) ①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선적항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어선 또는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을 접한 그 소유자의 주소지인 시·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읍·면에 소재하는 항·포구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선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지정하는 항·포구를 선적항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5. 17., 2008. 7. 8.>

1. 국내에 주소가 없는 어선의 소유자가 국내에 선적항을 정하는 경우
2. 어선의 소유자의 주소지가 어선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을 접한 시·구·읍·면이 아닌 경우
3. 삭제<1999. 5. 17.>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어선의 소유자의 주소지 외의 항·포구를 선적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②선적항의 명칭은 항·포구의 명칭이나 어선 또는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을 접한 시·군·구·읍·면의 명칭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③ 삭제<1999. 5. 17.>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적항으로 정하고자 하는 항·포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포구를 선적항으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 5. 17., 2002. 7. 15., 2008. 7. 8.>

1. 지정받고자 하는 선적항이 당해어선 또는 선박이 주로 입·출항하는 항·포구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받고자 하는 선적항이 매립·간척등 공공개발예정지역으로 고시되어 공사착공기일의 촉박등의 사유로 선적항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삭제<1999. 5. 17.>

⑥ 삭제<1999. 5. 17.>

⑦ 삭제<1999. 5. 17.>

제23조(등록사항)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어선원부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1998. 1. 24., 1999. 5. 17., 2002. 7. 15., 2007. 10. 18., 2008. 7. 8., 2009. 12. 14., 2020. 9. 3.>

1. 어선번호
2.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3. 어선의 종류
4. 어선의 명칭
5. 선적항

6. 선체재질
7. 범선의 돛(범장, 帆裝)(범선의 경우만 해당한다)
8. 배의 길이
9. 배의 너비
10. 배의 깊이
11. 총톤수
12. 폐위장소의 합계용적
 - 가. 상갑판아래의 용적
 - 나. 상갑판위의 용적
 - (1) 선수루의 용적
 - (2) 선교루의 용적
 - (3) 선미루의 용적
 - (4) 갑판실의 용적
 - (5) 그 밖의 장소의 용적
13. 제외장소의 합계용적
 - 가. 선수루의 용적
 - 나. 선교루의 용적
 - 다. 선미루의 용적
 - 라. 갑판실의 용적
 - 마. 그 밖의 장소의 용적
14. 기관의 종류·마력 및 대수
15. 추진기의 종류 및 수
16. 조선지
17. 조선자
18. 진수연월일
19. 소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20. 공유자의 지분율(어선이 공유인 경우에 한한다)
 - ② 제1항의 어선원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07. 10. 18.>

제24조(어선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선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과 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 1. 24., 2008. 3. 3., 2008. 7. 8., 2009. 12. 14., 2013. 3. 24.>

1. 선수양현의 외부에 어선명칭을, 선미외부의 잘 보이는 곳에 어선명칭 및 선적항을 10센티미터크기이상의 한글(아라비아숫자를 포함한다)로 명료하고 내구력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의 식별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어업별로 어선명칭의 크기, 표시방법등에 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2.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은 선수와 선미의 외부 양측면에 흘수를 표시하기 위하여 선저로부터 최대흘수선상에 이르기까지 20센티미터마다 10센티미터크기의 아라비아숫자로서 흘수의 치수를 표시하되, 숫자의 하단은 그 숫자가 표시하는 흘수선과 일치시켜야 한다.

② 특수한 구조로 인하여 어선명칭등 어선의 표시사항을 제1항에 따라 표시하기 곤란한 어선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이를 표시할 수 있다. <개정 1998. 1. 24., 2008. 3. 3., 2008. 7. 8., 2013. 3. 24.>

제25조(어선번호판의 제작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어선번호판은 알루미늄, 동판 또는 강판 등의 금속재이거나 합성수지재의 내부식성 재료로 제작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한다. <개정 1999. 5. 17., 2008. 7. 8., 2017. 1. 2.>

② 어선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제작된 어선번호판을 조타실 또는 기관실의 출입구등 어선 안쪽부분의 잘 보이는 장소에 내구력있는 방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업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어선표지판을 설치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어선번호판 부착을 면제한다. <개정 1998. 1. 24., 1999. 5. 17., 2008. 7. 8., 2009. 12. 14., 2010. 4. 28., 2023. 2. 3.>

③ 삭제 <1999. 5. 17.>

제26조(등록사항의 변경신청 등) ① 법 제17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나 법 제17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등록과 함께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허가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그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어선등록신청서·어선변경등록신청서 또는 어업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의 소유자가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같은 시·군·구 내에서 전입신고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한 경우에는 주소변경에 대한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6. 7., 2018. 5. 1., 2023. 2. 3.>

1. 어선검사증서 및 매매·상속 관련 서류 등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선박국적증서·선박국적증서영역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3.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법 제17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등록과 함께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사항중 선적항을 다른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항·포구로 변경하는 내용이 있는 때에는 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어선의 어선원부 및 그 부속서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9. 5. 17., 2002. 7. 15., 2008. 7. 8., 2014. 12. 31.>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 또는 제2항에 따른 어선원부 등을 송부 받은 때에는 어선원부에 변경등록을 한 후 선박국적증서등을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에 따라 선박국적증서등을 다시 발급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17., 2002. 7. 15., 2008. 7. 8., 2011. 3. 30.>

[제목개정 2012. 6. 7.]

제27조 삭제 <1999. 5. 17.>

제28조(등록사항의 정정신청등) ①어선의 소유자가 등록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전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사항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2. 7. 15., 2008. 7. 8., 2012. 6. 7., 2017. 1. 2.>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정정신청을 받거나 등록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어선원부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박국적증서등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다시 작성하여 발급하고, 구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 24., 1998. 9. 5., 2002. 7. 15., 2008. 7. 8.>

제29조(등록말소와 어선원부의 보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어선등록말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8.>

1. 등록 말소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어선번호판
3. 선박국적증서등
4. 다음 각 목의 서류(「선박등기법」 제2조에 따른 선박등기 대상 어선의 경우에 한정한다)
 - 가. 선박등기부 등본

나. 압류권자·저당권자·공유자 등 해당 어선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의 승낙서 또는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의 등본(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어선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해당 어선의 어선원부에 “말소”의 표시를 한 후 2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7. 15., 2008. 7. 8.>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어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따른 어선등록말소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2. 7. 15., 2008. 7. 8., 2017. 6. 28.>

제30조(어선원부의 등본·초본의 발급신청 등) 누구든지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어선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정보통신망이나 무인(無人)민원발급기를 통

한 직접 발급을 포함한다]을 신청하거나 이해관계있는 부분에 대하여 어선원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7. 8., 2018. 5. 1.>

[제목개정 2008. 7. 8.]

제31조(관할구역등의 변경에 따른 조치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구역의 변경으로 선척항이 다른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구역에 속하게 된 경우에는 변경전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선의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어선에 관한 어선원부와 부속서류를 변경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어선원부등을 송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변경된 사실을 당해어선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7. 15.>
②행정구역의 개편이나 그 명칭 또는 지번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어선원부 및 선박국적증서등에 기재된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 또는 지번등은 이를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2조(등록 등의 통보)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17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과 관련하여 주소의 변경등록 및 어선의 등록말소만 해당한다. <개정 2002. 7. 15., 2007. 11. 23., 2008. 3. 3., 2008. 7. 8., 2009. 12. 14., 2011. 3. 30., 2013. 3. 24., 2019. 8. 20.>

1. 해당 어선이 등기된 등기소(「선박등기법」의 적용을 받는 어선에만 해당한다)
2. 해양수산부장관. 다만,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
3. 해당 어선에 관련된 어업의 면허·허가기관
4. 중앙전파관리소

[전문개정 2001. 12. 31.]

제3절 선박국적증서등

제33조(선박국적증서등의 서식)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는 별지 제35호서식, 선적증서는 별지 제36호서식, 등록필증은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8.>

제33조의2(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의무 면제) 법 제15조 단서에서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어업·허가어업·신고어업 또는 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말한다. <개정 2009. 12. 14., 2010. 4. 28., 2013. 3. 24., 2017. 6. 28., 2020. 8. 28., 2023. 2. 3., 2023. 12. 18.>

1.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어업·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2. 「수산업법」 제27조에 따른 어장관리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에 따른 양식장 관리에 사용하는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
3.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업허가증을 갖춰 두고 있는 어선
[전문개정 2008. 7. 8.]

제34조(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의 발급신청 등) ①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영역서발급신청서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7. 15., 2008. 7. 8., 2013. 10. 30.>

1. 선박국적증서

2. 여권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2. 7. 15., 2008. 7. 8.>

③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를 소지한 자가 선박국적증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환하는 때에는 그 영역서도 같이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2. 7. 15.>

[제목개정 2008. 7. 8.]

제35조 삭제 <1999. 5. 17.>

제36조 삭제 <1999. 5. 17.>

제37조 삭제 <1999. 5. 17.>

제38조 삭제 <1999. 5. 17.>

제39조(선박국적증서등의 무효통보)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박국적증서등과 가선박국적증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서가 무효임을 지체없이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 7. 15., 2008. 7. 8.>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2.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분실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음을 신고받은 경우
3. 삭제<1999. 5. 17.>

제40조 삭제 <2009. 12. 14.>

제4장 어선 및 어선용품의 검사 등 <신설 2009. 12. 14.>

제1절 통칙 <신설 2009. 12. 14.>

제41조(만재흡수선의 표시 생략)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2018. 5. 1., 2020. 9. 3.>

1.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어선
2. 선단조업형태의 어업을 하는 어선 중 어획물 또는 그 가공품을 해당 어선에 싣지 않고 어로 작업에만 종사하는 어선
3.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임시항행검사를 받고 항행하는 어선
4. 시운전을 위하여 항행하는 어선
5. 목선과 그 밖에 만재흡수선을 표시하는 것이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어선

[본조신설 2009. 12. 14.]

제42조(무선설비의 설치대상어선 등)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1.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에 종사하는 어선
 2.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어선
- ② 법 제5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행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4., 2018. 5. 1.>

1. 임시항행검사증서를 가지고 1회의 항행에 사용하는 경우
2. 시운전을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 12. 14.]

제42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제외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선을 말한다. <개정 2017. 6. 28., 2018. 5. 1., 2019. 3. 22., 2020. 8. 28., 2023. 2. 3., 2025. 1. 3.>

1. 무동력어선
2.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3.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에 종사하는 어선
4.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면허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 양식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제3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제3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거나 승인받은 어선. 다만,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은 제외한다.
5.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서해특정해역에서 「수산업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근해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의 부속선

6.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으로서 상갑판이 없이 현단(舷端)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상갑판 상부에 구조물이 없는 어선[기관실의 보호를 위하여 기관실 위벽(圍壁)만 설치한 어선을 포함한다]

② 삭제 <2017. 6. 28.>

③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이하 “어선위치발신장치”라 한다)로부터 수집한 어선의 위치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해당 어선의 소유자나 선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9. 3., 2023. 12. 18.>

1. 어선의 안전운항

2. 불법 어업·영업의 단속

3. 수산자원의 조사 및 수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조사. 이 경우 수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조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해양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조사

5. 어선의 출항·입항 신고의 관리

6. 군의 해안경계작전 지원

[본조신설 2012. 3. 16.]

[제목개정 2019. 3. 22.]

제2절 검사의 집행 <신설 2009. 12. 14.>

제43조(정기검사)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최초로 항행에 사용하는 어선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0조에 따른 건조검사 및 제53조제1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 신청 시에 첨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개정 2013. 3. 24.>

1.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조검사증서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증서 (건조검사 또는 별도건조검사를 정기검사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2. 정기검사 관련 승인도면(도면을 승인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3.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예비검사증서

4.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검정증서

5.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건조·제조확인증 또는 정비확인증

②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어선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해당 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개정 2013. 3. 24.>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2.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예비검사증서
 3.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검정증서
 4.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건조·제조확인증 또는 정비확인증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3조 각 호의 설비, 법 제3조의2에 따른 복원성의 유지 및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에 대하여 검사한다.<개정 2013. 3. 24., 2018. 5. 1.>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어선에 대하여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뒤쪽에 다음 검사시기와 검사종류를 적어야 한다.<개정 2013. 3. 24.>
[본조신설 2009. 12. 14.]

제44조(중간검사) ①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간검사는 제1종 중간검사와 제2종 중간검사로 구분하며, 어선 규모에 따라 받아야 하는 중간검사의 종류와 그 검사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총톤수 2톤 미만인 어선은 중간검사를 면제한다. <개정 2011. 3. 30.>

1. 배의 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어선

제1종 중간검사를 정기검사 후 두 번째 검사기준일 전 3개월부터 세 번째 검사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이내에 받을 것
 2.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

가. 선령이 5년 미만인 어선

제1종 중간검사를 정기검사 후 두 번째 검사기준일 전 3개월부터 세 번째 검사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이내에 받을 것

나. 선령이 5년 이상인 어선

 - 1) 제1종 중간검사: 정기검사 후 두 번째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또는 세 번째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기간 이내에 받을 것. 다만, 선저검사(어선의 밑부분에 대한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지난 번 선저검사일부터 3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2) 제2종 중간검사: 정기검사 또는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의 검사기준일을 제외한 검사기준일의 전후 3개월의 기간 이내에 받을 것
- ②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에 제4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한다.
<개정 2013. 3. 24., 2018. 5. 1.>
1. 제1종 중간검사: 법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6호,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설비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
 2. 제2종 중간검사: 법 제3조제1호(선체의 내부구조로 한정한다), 제2호(선체 내부의 추진설비로 한정한다), 제3호, 제5호(선체 내부의 조타설비로 한정한다), 제8호, 제9호, 제11호의

설비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중간검사에 합격한 어선에 대하여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뒤쪽에 다음 검사시기와 검사종류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3. 24.>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선소유자는 장기항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검사기준일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검사완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을 새로운 검사기준일로 한다.

[본조신설 2009. 12. 14.]

제45조(중간검사시기의 연기) ① 해외수역에서의 장기간 항행·조업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중간검사를 받을 수 없어 중간검사시기를 연기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중간검사시기연기신청서에 해당 어선의 항해, 조업일정 및 현재의 위치를 나타내는 서류와 해당 어선의 검사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어선의 항해 및 조업 일정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검사기준일부터 1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검사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검사시기와 검사종류 등을 어선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4.>

- ③ 제2항에 따라 연기 받은 기간 이내에 해당 어선이 중간검사를 받을 장소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검사시기의 연기로 인하여 연기된 중간검사와 정기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제1종 중간검사와 제2종 중간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제1종 중간검사를 실시한다.

[본조신설 2009. 12. 14.]

제46조(특별검사) ①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특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3. 3. 24.>

-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1. 어선검사증서
2. 특별검사와 관련되는 서류

[본조신설 2009. 12. 14.]

제47조(임시검사) ①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4., 2017. 6. 28., 2018. 5. 1., 2020. 9. 3., 2025. 4. 28.>

1. 배의 길이, 너비, 깊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체 주요부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

- 가. 상갑판 아래의 선체, 선루(船樓) 또는 기관실 위벽의 폭로부(暴露部)
 - 나. 갑판실(승선자가 거주하거나 항상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의 측벽 또는 정부갑판(頂部甲板)
 - 다. 선루갑판 아래의 폭로부 외판
 - 라. 격벽에 설치되어 폐위(閉圍)구역을 보호하는 폐쇄장치(목제창구덮개 또는 창구복포는 제외한다)
2. 어선의 추진기관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추진기관을 새로 설치·교체하거나 그 출력을 변경하려는 경우
 - 나. 추진기관이 아닌 내연기관[원 출력 30마력(PS)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새로 설치·교체하거나 그 출력을 변경하려는 경우
 - 다. 추진기관이 아닌 내연기관[원 출력 30마력(PS)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의 출력을 30마력(PS)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 라. 추진기관용 동력전달장치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
 - 마. 프로펠러축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
 - 바. 발전기[정격출력이 5킬로와트(kW)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
3. 타(舵) 또는 조타장치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
4. 연료탱크 및 그 밖에 인화성 액체 또는 인화성 고압가스가 새거나 축적될 우려가 있는 곳에 전선로를 새로 설치하거나 설치되어 있는 전선로를 교체하려는 경우
5. 어선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어업의 종류를 변경할 목적으로 어선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6.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만, 어선 명칭 및 선적항의 변경 등 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에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어선용품 중 어선에 고정 설치되는 것으로서 법 제3조제7호(어로설비는 제외한다), 제8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
8. 만재흡수선을 새로 표시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9. 법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가. 복원성에 관한 기준을 새로 적용받는 경우
 - 나. 승인받은 복원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어선용품을 신설·증설·교체 또는 제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다만, 별표 1에 따른 복원성 승인 면제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보일러 안전밸브의 봉인을 개방하여 조정하려는 경우
11. 하역설비의 제한하중, 제한각도 및 제한반지름(이하 “제한하중등”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

12. 승강설비의 제한하중 또는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13. 해양사고 등으로 어선과 관련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신설·교체가 필요한 경우
14. 어선의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할 때에 어선설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검사증서의 뒤쪽에 검사받을 내용 및 검사시기를 적어야 한다.
- ②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4., 2018. 5. 1.>
1. 제43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해당 서류
 2. 임시검사 관련 승인도면(도면을 승인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3. 어선개조허가서 또는 어선개조발주허가서(어선의 개조허가 또는 개조발주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개조 또는 수리를 하는 어선소유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개조 또는 수리를 시작했을 때부터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 9. 3.>
- ④ 어선소유자는 제1항제14호에 따라 지정된 임시검사의 시기를 앞당겨 받을 수 있다.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어선에 대하여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뒤쪽에 다음 검사시기와 검사종류를 적어야 한다.<개정 2013. 3. 24.>
- ⑥ 어선소유자는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받을 때에 임시검사사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 [본조신설 2009. 12. 14.]

제48조(임시항행검사) ①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임시항행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9. 3.>

1. 총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을 받을 장소로 항행하려는 경우
 2. 어선검사를 받기 위하여 시운전을 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어선검사증서의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기 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시로 항행하려는 경우
- ②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임시항행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에 해당 어선의 운항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4.>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3조제8호·제9호·제11호의 설비와 해당 어선의 감항성에 대하여 검사한다.<개정 2013. 3. 24.>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어선의 항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증서를 발급한다.<개정 2013. 3. 24.>

[본조신설 2009. 12. 14.]

제49조(어선의 검사 면제 등) ①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어선의 검사가 면제되는 어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6조제1항에 따른 특별검사의 사유가 발생하여 어선소유자가 특별검사를 신청하거나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어선검사증서에 적힌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어선소유자가 임시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 3. 16., 2013. 3. 24.>

1.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2.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어선으로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은 어선
3.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일정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그 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한 후 해당 어선을 계류(이하 “계선”이라 한다)한 어선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계선을 하려는 어선소유자는 계선기간 및 계선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42호서식의 계선사유서에 해당 어선의 어선검사증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③ 제2항에 따른 계선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이 끝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선한 어선이 제2항에 따른 계선사유가 없어진 경우에 해당 어선을 항행에 재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 정기검사

2.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경우

가. 중간검사와 정기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나. 제1종 중간검사와 제2종 중간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제1종 중간검사

[본조신설 2009. 12. 14.]

제50조(건조검사)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건조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어선의 건조를 시작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개정 2013. 3. 24.>

1. 건조검사 관련 승인도면(도면을 승인한 대행검사기관에 건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2.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예비검사증서

3.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검정증서

4.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건조·제조확인증 또는 정비확인증

②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시 수행하는 선체 압력시험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09. 12. 14.]

제51조(건조검사의 면제)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조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4.>

1. 무동력어선
 2.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어선
 3.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목선
 4. 외국의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정부 또는 국내외의 공인된 선박검사기관에서 건조검사에 준하는 검사를 받은 어선
- [본조신설 2009. 12. 14.]

제52조(예비검사) ① 법 제22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용품”이란 별표 3의 어선용품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② 제1항에 따른 어선용품에 대하여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예비검사 신청서에 예비검사 관련 승인도면(제조·개조 또는 수입의 경우에 한정하며, 도면승인을 한 대행검사기관에 예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③ 제2항에 따른 예비검사는 해당 어선용품에 대하여 제조·개조·수리 또는 정비를 시작했을 때부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어선용품 중 팽창식 구명설비의 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예비검사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곳 또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4조제4항에 따라 팽창식구명설비정비시설등확인서를 발급 받은 곳에서 수리 또는 정비를 시작했을 때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20. 9. 3.>

④ 제3항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4의 팽창식 구명설비의 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에 맞는 시설 등을 갖추고 별지 제45호서식의 팽창식 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1. 시설명세서
2. 별표 4 제2호가목에 따른 정비기술자의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별표 4 제4호에 따른 자체 정비기준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확인신청을 받은 경우 팽창식 구명설비 정비시설 등이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46호서식의 팽창식 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13. 3. 24.>

⑥ 제3항 후단에 따른 팽창식 구명설비의 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예비검사인 경우에는 예비검사증서의 발급에 갈음하여 정비기록부에 선박검사원이 서명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예비검사에 합격한 어선용품에 대하여는 제65조에 따른 예비검사 합격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본조신설 2009. 12. 14.]

제53조(별도건조검사) ①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별도건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 서식의 별도건조검사신청서에 별도건조검사를 받기 위하여 승인받은 도면(도면을 승인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3. 3. 24.>

② 제1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설비와 만재흘수선으로 하되, 선체 압력시험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별도건조검사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4.>

[본조신설 2009. 12. 14.]

제54조(도면의 승인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도면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도면승인(변경)신청서에 별표 6에서 정한 해당 어선의 검사종류별 관련 도면 3부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면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2023. 12. 18.>

1. 최초 도면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이 없는 경우의 도면
2. 같은 조선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승인된 도면에 따라 건조되는 같은 형태의 후속 어선의 도면
3. 대행검사기관을 변경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의 기존 도면. 다만, 기존 도면이 해당 어선과 같지 아니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해당 대행검사기관에서 설계하거나 설계 감리한 도면
5. 제5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어선의 도면
6. 법 제3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개발하여 고시하는 표준어선형의 도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도면이 법 제3조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별표 7의 증인을 해당 도면의 적절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

③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은 승인받은 도면을 선장이나 어선원이 즉시 꺼내어 확인할 수 있는 어선내의 적당한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어선내의 장소가 좁아 도면을 갖추어 둘 수 없는 어선으로서 어선소유자, 공단 또는 선급법인을 통하여 도면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 12. 14.]

제55조(검사의 준비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어선의 검사종류별 준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검사 준비사항: 별표 8

2. 중간검사 준비사항: 별표 9
3. 특별검사 준비사항: 별표 8 중 해당 설비
4. 임시검사 준비사항: 별표 8 중 해당 설비
5. 임시항행검사 준비사항: 별표 10
6. 건조검사 준비사항: 별표 11
7. 별도건조검사 준비사항: 별표 12
8. 예비검사 준비사항: 별표 13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선체두께의 측정은 강선으로서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측정한다.<개정 2012. 3. 16., 2018. 5. 1.>

1. 선령 1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정기검사 시에 측정
 2. 선령 30년 이상인 경우: 정기검사 시와 제1종 중간검사 시에 각각 측정
- ③ 제2항에 따른 선체두께 측정범위 및 측정방법 등은 별표 14와 같다.<신설 2012. 3. 16.>
[본조신설 2009. 12. 14.]

제56조(검사의 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나 중간검사에서 해당 정기검사일이나 중간검사일 전 6개월 이내에 부분적인 수리나 정비를 하고 임시검사에 합격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검사의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는 어선에 대하여는 별표 8의 제2호자목(효력시험에 한정한다), 제4호다목 및 제7호다목(구명설비의 현상검사에 한정한다) 외의 검사준비를 면제한다.<개정 2018. 5. 1.>

③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선령 15년 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 별표 9 제1호가목의 선체에 관한 준비사항 중 별표 8 제1호가목의 선체에 대한 입거(入渠) 또는 상가(上架) 준비를 수중검사 준비로 갈음할 수 있고, 별표 8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3호나목의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1., 2018. 5. 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수중검사 결과 부식 또는 손상 등으로 인하여 입거 또는 상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거 또는 상가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4.>

⑤ 제3항에 따른 수중검사준비와 그 검사방법 등은 별표 15와 같다.

⑥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의 검사준비 및 서류제출 등에 대하여는 별표 16과 같이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8. 5. 1.>
[본조신설 2009. 12. 14.]

제57조(어선검사사항의 통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를 실시할 때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기는 검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어선의 선적항

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4.>

[본조신설 2009. 12. 14.]

제58조(어선 검사 등의 참여) ① 어선의 검사 및 검정·확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그의 대리인은 어선의 검사 등을 하는 현장에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어선의 검사 등에 참여한 자는 검사 및 검정·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12. 14.]

제59조(형식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9호 서식의 형식승인(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형식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7., 2013. 3. 24.>

②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 시험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한 형식승인에 필요한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본조신설 2009. 12. 14.]

제59조의2(검정의 신청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형식승인대상물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크기나 모양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별지 제51호서식의 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1. 형식승인 품명·형식 및 규격(규격이 있는 경우에만 표시한다)
2. 형식승인증서번호와 형식승인일자
3. 제조번호와 제조일자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형식승인대상물건이 형식승인을 받은 제조공정, 부품, 자재 및 각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여 제조사양서대로 제조되었는지와 제2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형식승인대상물건에 제65조에 따른 검정 합격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본조신설 2009. 12. 14.]

제59조의3(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형식승인(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7., 2013. 3. 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형식승인에 필요한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본조신설 2009. 12. 14.]

제59조의4(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6의2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5. 1.]

제59조의5(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이하 “형식승인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의2서식의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

1. 기관의 연혁, 설립 목적, 주요 기능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2. 법 제24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이하 “형식승인시험”이라 한다)에 종사할 인원 및 그 자격을 적은 서류와 그 증빙서류(해당 시험업무에 종사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3.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국가표준기본법」 또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정·검정을 받은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목록, 사양서 및 교정·검정을 받은 기기의 관리계획서
4. 시험·검사기관 인정서(영 제4조의2제1항제4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장비이용계획서

가. 영 제4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

- 1) 시설 또는 장비의 임차 사유
- 2) 임차하려는 시설 또는 장비의 종류
- 3) 임차하려는 시설의 소재지 또는 장비의 제조자의 명칭 및 주요 기능에 관한 사항

나. 영 제4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

- 1) 다른 시험기관에의 의뢰 사유
- 2) 의뢰하려는 시험항목
- 3) 의뢰하려는 다른 시험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6. 제59조의6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 인정서(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영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의3서식의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기관의 시험능력 등을 고려하여 일부 시험항목에 한정하여 지

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형식승인시험기관은 영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시험항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 및 사유에 관한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영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5. 1.]

[종전 제59조의5는 제60조의2로 이동 <2018. 5. 1.>]

제59조의6(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의 인정) ① 영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의4서식의 지정기준 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4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 임차하려는 시설 또는 장비가 해당 형식승인시험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제4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 의뢰하려는 시험기관이 해당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 및 시험능력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53호의5서식의 지정기준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5. 1.]

[종전 제59조의6은 제60조의3으로 이동 <2018. 5. 1.>]

제59조의7(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6의2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5. 1.]

[종전 제59조의7은 제60조의4로 이동 <2018. 5. 1.>]

제60조(지정사업장의 지정기준 등)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건조사업장·지정제조사업장 또는 지정정비사업장(이하 “지정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이하 “지정대상물건”이라 한다)의 범위,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설비, 인원 등 지정사업장의 지정에 관한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전문개정 2018. 5. 1.]

제60조의2(지정사업장의 지정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지정사업장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8. 5. 1.>

1. 사업장의 연혁·조직 및 업무분장의 개요
2. 제60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요건이 포함된 지정대상물건의 건조·제조에 관한 규정(지정건조사업장 또는 지정제조사업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로 한정하고, 이하 “건조·제조규정”이라 한다)
 - 가. 지정대상물건의 구조
 - 나. 지정대상물건의 성능 및 주된 재료
 - 다. 건조·제조공정
 - 라. 품질관리
 - 마. 시험과 검사체계
4. 다음 각 목의 요건이 포함된 지정대상물건의 정비에 관한 규정(지정정비사업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로 한정하며, 이하 “정비규정”이라 한다)
 - 가. 분해 및 조립방법과 사용공구
 - 나. 부품 또는 부재별 점검 및 정비방법
 - 다. 부품 또는 부재별 사용시간과 손상정도 등에 따른 사용한도의 판정기준
 - 라. 조립 후의 조정방법
5. 지정대상물건에 대한 자체검사기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장이 제60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서류와 현장심사(이미 지정받은 품목과 같은 품목인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생략한다)를 통하여 확인하고, 건조·제조규정 또는 정비규정이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며, 해당 사업장이 건조·제조 또는 정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지정사업장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4., 2018. 5. 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3. 3. 24.>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을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4., 2018. 5. 1.>

[본조신설 2009. 12. 14.]

[제목개정 2018. 5. 1.]

[제59조의5에서 이동 <2018. 5. 1.>]

제60조의3(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확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지정사업장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8. 5. 1.>

1. 변경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

2. 지정사업장 지정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내용 및 사유가 지정사업장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55호서식의 지정사업장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4., 2018. 5. 1.>

[본조신설 2009. 12. 14.]

[제59조의6에서 이동 <2018. 5. 1.>]

제60조의4(지정대상물건의 확인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대상물건과 지정사업장으로 지정받은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으려는 지정대상물건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확인하고, 그 외의 지정대상물건에 대해서는 지정사업장에서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8. 5. 1.>

1. 지정건조사업장의 경우: 소형어선의 선체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강화플라스틱제 선체

나. 알루미늄합금제 선체

2. 지정제조사업장의 경우: 연속최대출력 600마력 미만의 내연기관

3. 지정정비사업장의 경우: 연속최대출력 600마력 미만의 내연기관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정대상물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크기 또는 모양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별지 제56호서식의 확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4., 2018. 5. 1.>

1. 지정사업장의 명칭, 지정번호 및 지정일자

2. 지정 품명·형식 및 규격(규격이 있는 경우에만 표시한다)

3. 건조·제조 또는 정비일자

4. 건조·제조번호 또는 정비번호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지정대상물건이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된 건조·제조규정 또는 정비규정에 적합하게 건조·제조 또는 정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지정대상물건에 제65조에 따른 확인 합격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4., 2018. 5. 1.>

④ 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지정사업장은 해당 지정대상물건이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된 건조·제조 또는 정비규정에 적합하게 건조·제조 또는 정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자체검사합격증서를 발급하고, 해당 지정대상물건에는 별표 18의 자체검사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

[본조신설 2009. 12. 14.]

[제59조의7에서 이동 <2018. 5. 1.>]

제60조의5(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8의2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5. 1.]

제60조의6(지도·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사업장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대상물건의 건조·제조 또는 정비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2018. 5. 1.>

[본조신설 2009. 12. 14.]

[제59조의8에서 이동 <2018. 5. 1.>]

제61조(하역설비의 확인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하역설비의 제한하중등에 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는 자는 하역장비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한하중등에 대하여 별지 제58호서식의 제한하중등 확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8. 5. 1., 2020. 9. 3.>

1. 데릭(Derrick)장치: 제한하중 및 제한각도

2. 지브크레인(Jib Crane): 제한하중 및 제한반지름

3. 그 밖의 하역장치: 제한하중

4. 하역장치에 처음으로 사용되는 하역장구와 용접 등에 의하여 수리를 한 하역장구: 제한하중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 제한하중등이 별표 19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59호서식의 제한하중등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

③ 어선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제한하중등 확인증을 어선에 갖추어두고, 제한하중등의 표시를 하역설비의 잘 보이는 곳에 금속제 판 또는 용접 등 항구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5. 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에 대하여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하역설비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 어선소유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18. 5. 1.>

⑤ 어선소유자는 제4항에 따른 하역설비검사기록부를 어선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설 2018. 5. 1.>

[본조신설 2009. 12. 14.]

[제목개정 2018. 5. 1.]

제62조 삭제 <2018. 5. 1.>

제3절 어선검사증서 등 <신설 2009. 12. 14.>

제63조(검사증서의 서식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검사증서, 검정증서, 건조·제조·정비 확인증 및 제한하중등 확인증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5. 1.>

1. 법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 가.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인 어선: 별지 제61호서식
 - 나.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 별지 제62호서식
 2.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선특별검사증서: 별지 제63호서식
 3.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증서: 별지 제64호서식
 4.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조검사증서: 별지 제65호서식
 5.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예비검사증서: 별지 제66호서식
 - 5의2. 법 제2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별도건조검사증서: 별지 제47호서식
 6.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검정증서: 별지 제67호서식
 7.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조(제조·정비)확인증: 별지 제68호서식
 8. 법 제2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제한하중등 확인증: 별지 제59호서식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증서, 검정증서, 건조·제조·정비확인증 및 제한하중등 확인증에 대하여 대항검사기관이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발급한다는 사실을 나타내야 한다.<개정 2018. 5. 1.>
-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검사증서, 검정증서 및 확인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신설 2023. 12. 18.>
- [본조신설 2009. 12. 14.]

제64조(어선검사증서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기재하는 최대승선인원과 만재흘수선의 표시 위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 3. 24., 2018. 5. 1.>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은 어선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 어선에 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어선원 외의 사람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이 경우 해양사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승선하는 사람은 최대승선인원의 산정에서 제외한다.<개정 2013. 10. 30., 2014. 12. 31., 2020. 9. 3., 2023. 2. 3., 2023. 12. 18.>

1. 어선원의 가족
2. 어선소유자(어선관리인 및 어선임차인을 포함한다) 및 어선회사의 소속 직원과 어선수리작업원
3. 시험·조사·지도·단속·점검·교습 등에 관한 업무에 사용되는 어선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승선하는 사람
4. 세관공무원, 검역공무원, 도선사 등으로서 어선원의 업무 외의 업무를 하는 사람
5. 「남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에 따른 남시어선에 승선하는 남시승객
6. 「수산업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의 나잠어업(裸潛漁業)을 위하여 승선하는 사람
7. 제46조제1항에 따라 특별검사를 받은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외의 사람
8. 「남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다목에 따른 남시터 관리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외의 사람

9.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유어장관리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외의 사람

10. 「수산자원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선에 승선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의 종류와 어획량 등을 조사하는 수산자원조사원

11. 수산업 또는 어촌에 관한 언론 보도나 취재를 목적으로 승선하는 사람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항행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승선인원 및 만재흘수선의 표시 위치 외에 해당 어선에 대하여 필요한 항행상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어선검사증서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8. 5. 1.>

[본조신설 2009. 12. 14.]

제65조(검사증서 등의 합격표시 등)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검사증서, 검정증서, 건조·제조·정비확인증 및 제한하중등 확인증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어선 또는 어선용품에 표시하는 합격표시 또는 증인은 별표 7에 따른다. <개정 2018. 5. 1.>

[본조신설 2009. 12. 14.]

제66조(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계산방법)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부터 계산한다.

1.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
2.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종전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3.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이 되는 날 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
4.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종전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종전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고 해당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가. 계선(제49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경우

나. 1년 이상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선을 상속하거나 매수한 경우

다. 어선소유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09. 12. 14.]

제67조(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차례만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 내에 해당 어선이 검사를 받을 장소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어선이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장소에 있는 경우: 3개월 이내
2. 해당 어선이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새로운 어선검사증서를 즉시 발급할 수 없거나 어선에 갖추어 둘 수 없는 경우: 5개월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4.>

1. 어선이 검사받을 장소에 있지 아니하여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어선의 현재의 위치를 나타내는 서류
2. 새로운 어선검사증서를 어선에 갖추어 둘 수 없는 경우: 현재 갖추고 있는 어선검사증서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서나 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4.>

1. 제2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70호서식의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승인서
 2. 제2항제2호의 경우: 연장 승인된 유효기간이 적혀 있는 현재의 어선검사증서
- [본조신설 2009. 12. 14.]

제68조(검사증서 등의 비치면제) 법 제29조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선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2020. 8. 28.>

1.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어업·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2. 「수산업법」 제27조에 따른 어장관리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에 따른 양식장 관리에 사용하는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

[본조신설 2009. 12. 14.]

제69조(재검사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검사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재검사 등 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거나 신청인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관계 부분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기각한다.<개정 2013. 3. 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검사 등을 직접 수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6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13. 3. 24.>

[본조신설 2009. 12. 14.]

제4장의2 어선 등의 거래 <신설 2017. 6. 28.>

제69조의2(어선거래시스템에 포함된 정보의 이용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어선거래시스템을 통하여 어선 및 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법 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어선설비등”이라 한다)의 매매 또는 임대차와 관련한 정보 중 어선소유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

지 제71호의2서식의 어선거래정보이용신청서에 해당 신청사항에 대한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31조제2항 후단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의 타당성·적합성
2.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 여부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여부 및 안전관리대책
4. 그 밖에 신청내용의 처리가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거래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정보 및 이미 공표된 통계자료 등을 인쇄 또는 정보통신망에의 연결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정보의 제공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하여야 하며, 어선원부 또는 그 전산자료를 그대로 복제하여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공단의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71호의3서식에 따른 어선거래정보이용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6. 28.]

제69조의3(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법 제31조제3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 가격, 매물현황 및 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어선중개업자”라 한다)의 거래현황 등 어선거래에 관한 정보
2. 어선의 사고·수리 이력 및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 현황에 관한 정보
3. 어선의 담보·압류 또는 그 해제 및 보험 등에 관한 정보

[본조신설 2017. 6. 28.]

제69조의4(어선중개업 등록의 신청 등) ① 법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의4서식의 어선중개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어업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어업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건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하며, 이하 “건축물대장”이라 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

1. 법 제31조의2제2호에 따른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중개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받은 교육만 해당한다)
2. 법 제31조의9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영 제5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4. 반명합판 사진(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사진만 해당한다)

② 법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1호의4서식의 어선중개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어업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어업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건축물대장(중개사무소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증

2. 등록한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어업관리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71호의5서식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어 주어야 한다.

1. 법 제31조의2 각 호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법 제31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어업관리단장은 제3항에 따라 어선중개업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의6서식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6. 28.]

제69조의5(어선중개업 교육) ① 법 제31조의2제2호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과목,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목(3과목): 어선중개업 제도, 어선중개업 실무, 직업윤리 및 소비자 보호

2. 교육시간: 21시간 이상(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받은 교육시간을 말한다)

3. 교육내용: 제1호의 교육과목별로 평가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모든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득점에 미달한 사람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다시 평가할 수 있다.

② 법 제31조의7에 따라 어선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후 2년마다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수 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내용: 어선중개 관련 법·제도, 어선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2. 교육시간: 6시간 이상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교육방법 및 교육계획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6. 28.]

제69조의6(행정처분기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9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7. 6. 28.]

- 제69조의7(휴업·폐업 및 재개업 등의 신고)** ① 법 제31조의5에 따라 어선중개업자는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의7서식에 따른 휴업·폐업·재개업·휴업연장 신고서에 어선중개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어업관리단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의5제3호에 따라 재개업 신고를 하는 어선중개업자는 법 제31조의9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8.>
- ② 어업관리단장은 법 제31조의5제3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반납받은 어선중개업 등록증을 어선중개업자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7. 6. 28.]

제5장 보칙 <신설 2017. 6. 28.>

- 제70조(어선의 결함신고)**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어선결함신고서에 결함내용을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을 통하여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선의 결함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내용을 별지 제73호서식의 어선결함신고기록부에 적고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결함 신고를 한 자의 신원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제74호서식의 어선결함신고자명부에 적어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 ④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출항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의 어선소유자에게 별지 제75호서식의 출항정지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12. 14.]

- 제70조의2(어선중개업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선중개업자의 어선 및 어선설비등에 대한 매매 또는 임대차의 중개에 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어선건조·개조업자의 어선 건조·개조 및 수리에 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9.>

[본조신설 2017. 6. 28.]

[제목개정 2025. 12. 19.]

- 제71조(증서등의 재발급 등)**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서·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서·어선건조(건조발주·개조·개조발주)허가사항변경허가서, 제14조제1항에 따른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제18조제

2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 제33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등록필증, 제34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영역서, 제52조제5항에 따른 팽창식 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 제53조제3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증서, 제59조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 제59조의3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사업장 지정서,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선특별검사증서,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증서,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조검사증서, 제6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예비검사증서, 제6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검정증서,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조(제조·정비)확인증, 제6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승인서, 제69조의4제3항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증, 제70조제4항에 따른 출항정지명령서(이하 이 조에서 “증서등”이라 한다)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6호 서식의 증서등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7., 2013. 3. 24., 2017. 6. 28., 2018. 5. 1.>

1. 삭제 <2012. 6. 7.>

2.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었으면 해당 증서등

3.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면 해당 증서등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증서등 중 주소나 선명의 변경 등 경미한 변경사유가 있어 증서등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증서등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증서등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한 후에 증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증서등을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본조신설 2009. 12. 14.]

제72조(등록업무 등의 실적통보)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직접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1998. 1. 24., 1999. 5. 17., 2002. 7. 15., 2008. 3. 3., 2008. 7. 8., 2013. 3. 24., 2013. 10. 30., 2023. 11. 17.>

1. 어선건조·개조등의 허가실적

2. 불법 어선건조·개조의 지도단속 실적

3. 어선의 등록·등록말소 실적

4. 과태료의 처분실적

5. 삭제 <1999. 5. 17.>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의 시기 및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 11. 17.>

[제목개정 2023. 11. 17.]

제73조(등록업무등의 확인·점검)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등록업무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고, 그 처리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 24., 2008. 3. 3., 2013. 3. 24.>

제73조의2(수수료)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는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13. 3. 24.>

[본조신설 2012. 6. 7.]

제74조(대행업무의 고시등)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업무의 대상범위를 정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 24., 1998. 9. 5., 1999. 5. 17., 2001. 12. 31., 2007. 11. 23., 2008. 3. 3., 2008. 7. 8., 2013. 3. 24.>

②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이를 취소한 때에는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8. 1. 24., 1998. 9. 5., 1999. 5. 17., 2001. 12. 31., 2007. 11. 23., 2008. 3. 3., 2008. 7. 8., 2013. 3. 24.>

③제2항에 따라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선박안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8. 9. 5., 2001. 12. 31., 2007. 11. 23., 2008. 7. 8.>

④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대행하는 업무의 처리방법등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1998. 1. 24., 1998. 9. 5., 2001. 12. 31., 2007. 11. 23., 2008. 3. 3., 2013. 3. 24.>

제75조(대행업무등의 계획·실적보고등) ①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업무를 대행하는 때에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대행업무의 계획·실적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 24., 1998. 9. 5., 1999. 5. 17., 2001. 12. 31., 2007. 11. 23., 2008. 3. 3., 2008. 7. 8., 2013. 3. 24.>

② 삭제<1999. 5. 17.>

③제1항에 따른 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보고사항·보고시기 및 보고방법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1998. 1. 24., 1998. 9. 5., 1999. 5. 17., 2001. 12. 31., 2007. 11. 23., 2008. 3. 3., 2008. 7. 8., 2013. 3. 24.>

제76조 삭제 <2018. 5. 1.>

제77조 삭제 <2020. 4. 6.>

부칙 <제1143호, 1994. 6. 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의 길이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측정된 어선의 길이·깊이 및 너비는 이 규칙에 의하여 측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어선의 총톤수를 개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어선번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현존하는 어선의 선박국적증서등에 기재된 어선번호는 이 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5톤미만의 무동력어선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 경과한 후를 말한다)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어선번호판의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현존하는 어선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정기검사를 받는 날(검사를 면제받는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을 받는 날)까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5조 (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새로이 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을 받아야 하는 총톤수 5톤미만의 무동력어선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 경과한 후 처음 도래하는 당해어선의 등록월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소형어선에 대한 정기검사 및 어선검사증서유효기간등에 관한 경과조치등) ①이 규칙 시행당시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어선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는 이 규칙 시행 후 그 검사중 먼저 도래하는 검사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어선에 대한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합격시 발급하는 어선검사증서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어선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것으로 본다.

부칙 <제48호, 1998. 1.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호, 1998. 9. 5.>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어선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8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1호중 “어선검사증서”를 각각 “선박검사증서”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제43조”를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6조”로, “어선검사집행지”를 각각 “검사장소”로 한다.

제21조제1항제5호중 “법 제5조제1항”을 “선박안전법 제4조제1항 및 2항”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중 “등록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기는 어선검사사항을 통보 받은 때”를 “등록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로 한다.

제32조중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검사업무등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한국어선협회 또는 선급법인을 말한다)”를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한국선박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한다) 또는 선급법인을 말한다]”로 한다.

제37조제1항중 “법 제21조제1항제1호”를 “선박안전법 제5조제1항제1호”로,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검사를 면제받는 어선”을 “선박안전법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어선”으로,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4장(제41조 내지 제65조)을 삭제한다.

제5장의 제목 “항행상의 조건 및 위험방지등”을 “국기게양의 의무등”으로 한다.

제66조 내지 제68조·제70조 및 제7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중 “한국어선협회”를 각각 “기술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원 또는 선급법인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선박검사원자격 등에관한규칙에 의한 검사원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75조제1항중 “한국어선협회”를 “기술원”으로, “검사업무등을”을 “업무를”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한국어선협회”를 “기술원”으로 한다.

②기술원 또는 선급법인은 검인기간이 지난 후에 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6조중 “한국어선협회”를 “기술원”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중 “제25조제3항·제53조제3항 및 제55조제4항”을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5 내지 별표 9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뒷면의 유의사항란중 “한국어선협회”를 각각 “한국선박안전기술원”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앞면의 구비서류란중 “어선검사증서”를 각각 “선박검사증서”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의 유의사항란중 “한국어선협회”를 각각 “한국선박안전기술원”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앞면중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0조제1항、제40조제1항 또는 제64조제1항”을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0조제1항 또는 제40조제1항”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의 제출하는 곳란중 “한국어선협회, 한국선급”을 “한국선박안전기술원”으로 하며, 동면의 유의사항란중 “어선검사증서, 어선특별검사증서, 임시항행증, 제조검사증서, 예비검사증서”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앞면의 구비서류란중 “어선검사증서”를 “선박검사증서”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의 제출하는 곳란 및 유의사항란중 “한국어선협회”를 각각 “한국선박안전기술원”으로 하며, 동면의 유의사항란중 “어선검사집행지”를 “검사장소”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중 “한국어선협회장”을 “한국선박안전기술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뒷면의 제출하는 곳란중 “한국어선협회”를 “한국선박안전기술원”으로 하고, 동면의 유의사항란중 “어선검사집행지”를 “검사장소”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중 “한국어선협회장 CHIEF OF KOREAN FISHING VESSEL SOCIETY”를 각각 “한국선박안전기술원장 PRESIDENT OF KOREAN INSTITUTE OF SHIP SAFETY AND TECHNOLOGY”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뒷면의 제출하는 곳란중 “한국어선협회”를 “한국선박안전기술원”으로 하고, 동면의 유의사항란중 “어선검사집행지”를 “검사장소”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의 뒷면의 유의사항중 “한국어선협회”를 “한국선박안전기술원”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서식의 뒷면의 제출하는 곳란 및 유의사항란중 “한국어선협회”를 각각 “한국선박안전기술원”으로 하고, 동면의 유의사항란중 어선검사면제 대상어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선박의 범위

- 총톤수 5톤미만의 선박으로서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
- 총톤수 5톤미만의 범선
- 총톤수 2톤미만의 선박
-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최초의 정기검사 실시)

별지 제42호서식 내지 별지 제5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7호, 1999. 5. 17.>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국기게양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용선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어선으로 등록한 선박의 대한민국 국기게양에 관하여는 제6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다른 법령의 개정) 어선의등록등에관한수수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0항 및 제11항 후단을 각각 삭제한다.
- ②법 제39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변경등록 및 선박국적증서등의 재교부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2와같다.
- 별표 2의 제목중 “재교부 및 검인”을 “재교부”로 하고, 동표중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의 검인란을 삭제한다.
- 별표 10을 삭제한다.

부칙 <제156호, 2000. 1. 6.> (선박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어선법시행규칙중 다음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3호중 “선박법시행령 제4조제2항”을 “선박법 제26조의2”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제212호, 2001. 12. 31.>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어선의 건조허가면제어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조중에 있거나 건조를 완료한 어선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조허가를 면제받은 어선이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31호, 2002. 7. 15.>

이 규칙은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호, 2004. 8. 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항질서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6호, 2007. 10. 18.>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0호, 2007. 11. 23.>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어선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장소 ” 를 “ 검사장소 ” 로 한다.

제32조제2호 단서 중 “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를 “ 「선박안전법」 제6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 로, “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검사협회"라 한다) ” 를 “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 으로 한다.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 검사협회 ” 를 각각 “ 공단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 선박검사원자격등에관한규칙에 의한 검사원 ” 을 “ 「선박안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 ” 으로 한다.

제75조제1항·제3항 및 제76조 중 “ 검사협회 ” 를 각각 “ 공단 ” 으로 한다.

⑧ 부터 ⑭ 까지 생략

제24조 생략

부칙 <제408호, 2008. 2. 4.>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가목 중 “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 ” 를 “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 ” 로 한다.

⑤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제413호, 2008. 2. 27.> (해운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다목 중 “해운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호, 2008. 3. 3.>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3[^] 까지 생략

3&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나목·라목,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호·제2항·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제2항, 제32조제2호,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73조, 제74조제1항·제2항·제4항, 제75조제1항·제3항, 제76조,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앞면, 별지 제23호서식 앞면, 별지 제24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26호서식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의2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하고, “안전정책담당관실”을 삭제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면, 별지 제24호서식 앞면, 별지 제26호서식 중 “MINISTER OF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를 각각 “MINISTER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로 한다.

3*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19호,2008. 7.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난은 수정하여 사용하고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01호,2009. 1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0년 4월 22일까지는 제4조제1호나목, 제68조제2호 및 별표 16 제3호카 목1)부터 3)까지의 개정규정 중 「수산업법」 제45조는 「수산업법」 제44조로, 「수산업법」 제27조는 「수산업법」 제29조로,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는 「수산업법」 제43조제3항으로 각각 본다.

제3조(총톤수 2톤 미만 어선의 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① 제43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총톤수 2톤 미만 어선(2008년 10월 1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된 어선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날까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배의 길이 7미터 이상: 2010년 3월 31일까지
2. 배의 길이 6미터 이상 7미터 미만: 2011년 3월 31일까지
3. 배의 길이 6미터 미만: 2012년 3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에 제43조제1항제2호의 승인도면 첨부를 면제한다.

제4조(별도건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2 제2호의 별도건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도입 전 해당 외국정부(대행 검사기관을 포함한다) 등이 실시한 검사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
2. 제작 또는 거치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관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120호,2010. 4. 28.>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까지 생략

⑦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단서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47조”로 하고, 제33조의2제2호 중 “「수산업법」 제29조”를 “「수산업법」 제27조”로 하며, 제64조제2항 본문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 <제181호, 2011. 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소변경의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경등록 등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주소의 변경등록 또는 어선의 등록말소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개조 등의 허가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어선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기 위하여 허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6조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중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이고 선령이 5년 미만인 어선에 대한 제2종 중간검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2종 중간검사를 실시한다.

부칙 <제264호, 2012. 3.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선검사의 준비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최초로 제1종 중간검사를 받는 어선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삭제 <2013. 10. 30.>

부칙 <제280호, 2012. 6.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어선의 건조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을 폐지한다.

부칙 <제309호, 2012. 10. 5.>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항 중 “ 「낙시어선업법」 ”을 “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호, 2013. 3. 24.>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 까지 생략

3\$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라목,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2호 본문, 제41조제5호,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4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제14호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1조제4호, 제5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7항, 제53조제1항·제3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6조제4항, 제57조,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59조의3제1항·제2항, 제5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9조의6제1항·제2항, 제5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9조의8,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1항, 제6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6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7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3조, 제74조제1항·제2항·제4항, 제75조제1항·제3항, 제76조, 별표 3 제1호타목, 같은 표 제2호나목, 별표 4 제2호가목,

같은 표 제4호·제5호, 별표 8 제1호과목, 별표 11 제2호, 별표 12 제2호, 별표 16 제2호가목1)가), 별표 17 제1호나목22), 같은 호 라목, 같은 표 제4호라목3)가), 별표 19 제2호가목, 별표 20 제1호나목·라목, 같은 표 제4호 단서,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서명란,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2호가목,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서명란,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2호가목,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서명란,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2호가목,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별지 제20호 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1호사목,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7호,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43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44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처리절차란,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48호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49호서식 앞쪽 서명란,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3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55호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앞쪽, 별지 제62호서식 앞쪽, 별지 제63호서식부터 별지 제68호서식까지, 별지 제70호서식, 별지 제7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72호서식 및 별지 제75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2제1항, 제52조제1항,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3조의2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7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76호서식 유의사항란 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3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앞쪽, 별지 제62호서식 앞쪽, 별지 제63호서식 및 별지 제64호서식부터 별지 제68호서식까지 중 “Minister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를 각각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3% 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51호, 2013. 10.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준비 면제사항 확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6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3호,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호, 2014. 12. 31.> (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호, 201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어선검사증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2항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어선검사증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검사 준비의 완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어선검사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56조제3항, 별표 8 및 별표 1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134호, 2015. 1. 8.>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4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의 □ 그 밖의 유의사항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⑦부터 1(까지 생략

부칙 <제217호, 2017. 1. 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44호, 2017. 6.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선의 등록말소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어선의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5호, 2018. 5.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에 따른 어선 등록사항의 변경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5호, 2019. 3. 22.>

이 규칙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6호, 2019. 8. 20.>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호 중 “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을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 ”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중 “ 선박안전기술공단 ”을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중 “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을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 선박안전기술공단 ”을 각각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을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중 “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을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 선박안전기술공단 ”을 각각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중 “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을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으로, “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를 “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47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51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58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59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61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62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63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64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65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66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67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68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69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70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7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71호의2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수수료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76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유의사항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 <제402호, 2020. 4. 6.>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2호, 2020. 8. 28.>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험양식업, 연구양식업 또는 교습양식업에 사용할 어선

제33조의2제2호 중 “어장관리”를 “어장관리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에 따른 양식장 관리”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제4호 본문 중 “면허어업”을 “면허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 양식업”으로,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3항”을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제3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제3항”으로 한다.

제68조제2호 중 “어장관리”를 “어장관리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에 따른 양식장 관리”로 한다.

⑪부터 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433호, 2020. 8. 28.>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1항제5호 중 “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5조제2항제2호 ”를 “ 「어선안전조업법」 제2조제4호 ”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435호, 2020. 9.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6 제3호바목1)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6호, 2021. 6. 3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9호, 2022. 1. 20.>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1호, 2023. 2. 3.>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나목 중 “ 「수산업법」 제45조 ”를 “ 「수산업법」 제46조 ”로 한다.

제25조제2항 단서 중 “ 「수산업법 시행령」 제47조 ”를 “ 「수산업법 시행령」 제42조 ”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 ”을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를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로,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 ”을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으로 한다.

제33조의2제3호 중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증 ”을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업허가증 ”으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1호”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1호”로 한다.

제64조제2항제6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로 한다.

별표 16 제3호카목3) 중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를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중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을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중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을 각각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쪽 유의사항란 제4호다목 단서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47조”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42조”로 한다.

⑭부터1*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602호,2023. 4. 25.>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630호,2023. 11. 17.>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9호,2023. 12.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3호,2025. 1. 3.>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1항제5호 중 “ 「어선안전조업법」 ”을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⑥ 생략

부칙 <제730호,2025. 4.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2호,2025. 12. 19.>

이 규칙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4호,2025. 12. 26.>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
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0. 9. 3.>

복원성 승인 면제 대상(제3조의2제1항제4호 관련)

어선의 주요치수의 변경 없이 어선용품의 증설·탑재 또는 철거 등으로 인한 중량 및 중심위치의 변화량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은 복원성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1. 상갑판 상부의 증설·탑재 또는 그 하부의 철거 등으로 경하상태(사람, 화물 등을 싣지 않은 어선 자체의 무게만을 나타내는 상태. 이하 같다)의 KG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중량증감량이 경하중량(사람, 화물 등을 싣지 않은 어선 자체의 중량. 이하 같다)의 0.5퍼센트 미만인 경우
2. 상갑판 하부의 증설·탑재 또는 그 상부의 철거 등으로 경하상태의 KG의 하강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중량증감량이 경하중량의 1.5퍼센트 미만인 경우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신설 2025. 12. 19.>

어선건조·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1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법제처 | 법 제9조의2
제1항제1호
61 | 등록
취소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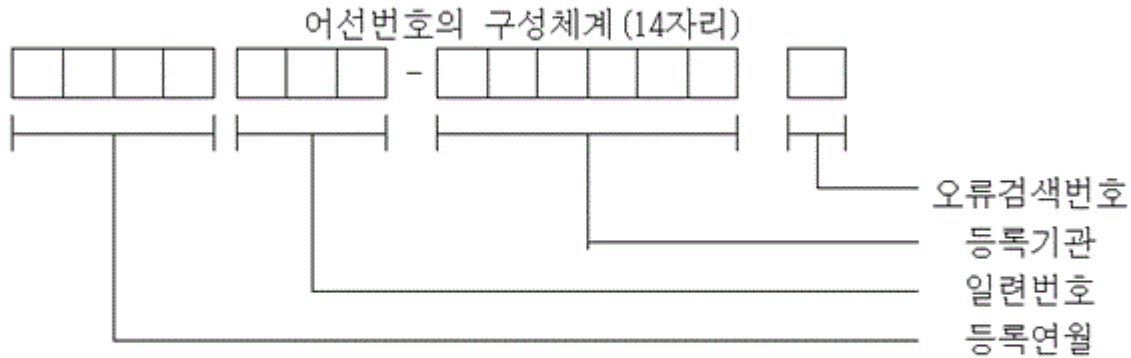
국가법령정보센터 |

| | | | | |
|--|----------------|-------------|-------------|-------------|
| 한 경우 | | | | |
| 나.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9조의2 제1항제2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다.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어선건조·개조업을 한 경우 | 법 제9조의2 제1항제3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라.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를 받은 해당 어선의 선체·기관·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한 경우 | 법 제9조의2 제1항제4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마.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9조의2 제1항제5호 | 등록
취소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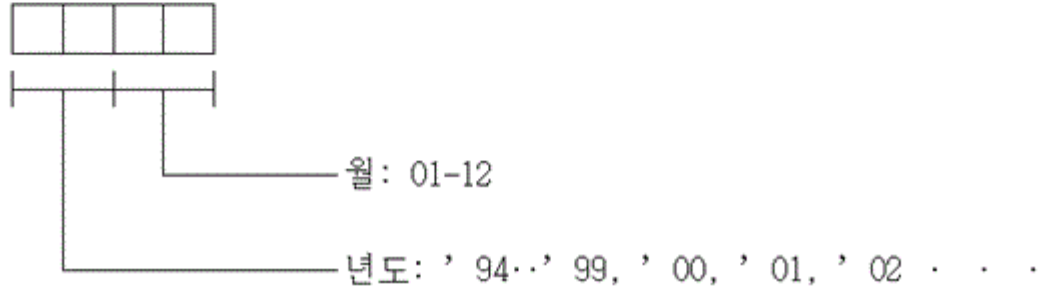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개정 2025. 12. 19.>

어선번호의 부여방법 (제21조제3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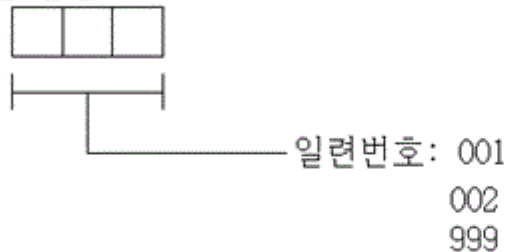
1. 어선에 대한 등록번호는 등록연월 4자리수, 일련번호 3자리수, 등록기관별 분류번호 6자리수 및 오류검색번호 1자리수를 차례로 연결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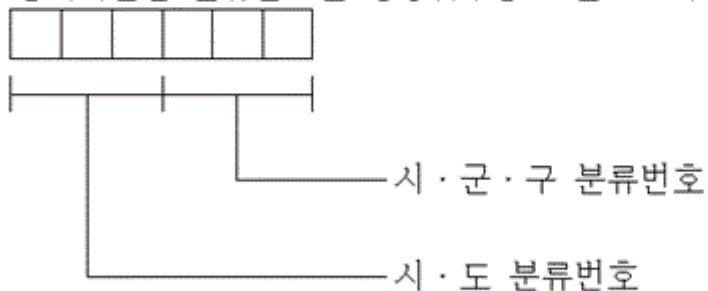
2. 등록연월은 연도 끝 2자리수와 월 2자리수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3. 일련번호는 어선원부에 기재하는 매월별 순서번호에 의하여 매월마다 새로운 순서에 의하되 그 순서번호가 3자리수가 아닌 경우에는 3자리수가 될 때까지 앞에 0을 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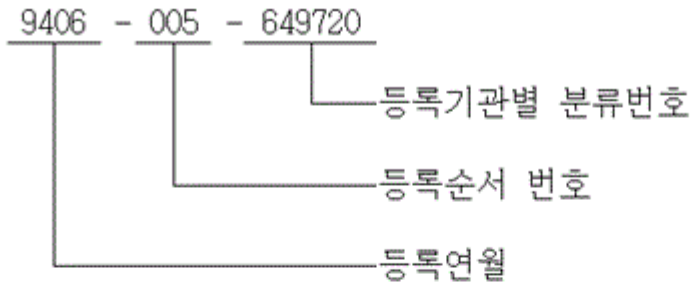
4. 등록기관별 분류번호는 행정업무용 표준코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5. 오류검색번호는 다음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출한다.

가. 등록연월, 등록순서 번호, 등록기관별 분류번호를 차례로 연결한 13자리의 숫자로 만든다.

[예시]



나. 각 숫자에 차례로 1과 2를 곱한 값(곱한 값이 10을 넘을 경우 그 곱한 값에서 10을 뺀 나머지의 값)을 모두 더하여 합을 구한다.

[예시]

$$\begin{array}{r}
 9406005649720 \\
 \times) 12121212121 \\
 \hline
 9802005248740 \\
 9+8+0+2+0+0+5+2+4+8+7+4+0=49
 \end{array}$$

다. 합을 10으로 나누어 몫과 나머지를 구한다.

[예시] $49 \div 10 = 4$ 나머지 9

라. 10에서 나머지를 뺀 값을 오류검색번호로 한다. 다만, 10에서 나머지를 뺀 값이 10인 때에는 0을 오류검색번호로 한다.

[예시] $10 - 9 = 1$ 오류검색번호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6. 30.>

건조검사 시 수행하는 선체 압력시험방법(제50조제2항 관련)

1. 입거(入渠)되거나 상가(上架)된 상태에서 압력시험을 실시한다.
2. 압력시험은 수압시험이나 기밀시험의 방법으로 하고, 다음에 따라 확인한다.
 - 가. 압력시험의 범위는 강력갑판 아래의 선체, 선루 또는 상갑판 위의 첫째 갑판실로 하며 반드시 선박검사원이 참관해야 한다.
 - 나. 물높이나 압력을 확인하고, 물이나 공기가 새지 아니하는지 확인한다.
 - 다. 압력이 걸린 상태에서 부재(部材)가 변형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 후 보강한다.
 - 라. 선체 각 부에 대한 수압시험은 다음의 방법으로 한다.

| 항 목 | 수압시험의 기준 |
|--|--|
| 1) 이중저 | 정판부터 공기관 상단까지의 물높이에 따른 압력과 정판부터 격벽갑판까지의 물높이에 따른 압력 중 큰 것에 상당하는 압력 |
| 2) 노출된 상갑판 및 선루갑판 | 호스내 압력이 2 bar [2 kgf/cm ²]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
| 3) 단격벽에 제2급 폐쇄장치를 갖춘 선루 내의 상갑판 | |
| 4) 수밀 격벽(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칸막이벽) 및 그 계단부 | |
| 5) 외판 | 호스 내 압력이 2 bar [2 kgf/cm ²]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또는 물높이에 따른 압력. 다만, 이중저·선수창 등을 구성하는 부분의 외판은 해당 부분의 수압시험의 방법에 따른다. |
| 6) 선수격벽 후방에 있는 묘쇄고 | 정판까지의 물높이에 따른 압력 |
| 7)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어선의 선수창(물탱크나 유탱크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 만재홀수선까지의 물높이에 따른 압력과 선수격벽의 높이의 3분의 2까지의 물높이에 따른 압력 중 큰 것에 상당하는 압력. 다만, 그 수선 이상의 부분은 호스 내의 압력이 2 bar [2 kgf/cm ²]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
| 8)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어선의 수밀격벽의 수밀문(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문) | 취부 전
그 수밀격벽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높이에 따른 압력에 상당하는 압력 |
| | 취부 후
호스 내의 압력이 2 bar [2 kgf/cm ²]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
| 9) 선미창(물탱크나 유탱크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선미관구획실(선미관이 설치된 부분) | 만재홀수선까지의 물높이에 따른 압력에 상당하는 압력. 다만, 만재홀수선 이상의 부분은 호스 내의 압력이 2 bar [2 kgf/cm ²]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

| | |
|--|--|
| 치된 구역) | |
| 10) 물탱크나 유탱크로 사용하는 선수창 또는 선미창 | 정판부터 다음 위치까지의 물높이에 따른 압력 중 가장 큰 것에 상당하는 압력
1) 넘침판의 상단
2) 만재홀수선 |
| 11) 디프탱크 | 3) 정판 위 2.4미터의 높이
4) 배의 깊이의 상부기점으로부터 정판까지의 수직거리의 3분의 2를 정판부터 상방으로 수직으로 측정한 높이 |
| 12) 제1급 폐쇄장치의 개구를 설치한 선루 및 저선미루단의 격벽 | 호스 내의 압력이 2 bar [2 kgf/cm ²]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
| 13) 축로 | |
| 14) 그 밖의 수밀통로(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는 통로) | |
| 15) 제1급 폐쇄장치를 설치한 선루단 칸막이벽의 출입구 | |
| 16) 수밀폐쇄장치(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는 폐쇄장치)를 갖춘 갑판구(창구를 포함한다) | |
| 17) 현문, 재화문 및 현창 | |
| 18) 펌프실과 겸용하지 아니하는 코퍼댐 | 정판부터 창구 정부까지의 물높이에 따른 압력에 상당하는 압력 |
| 19) 펌프실과 겸용하는 코퍼댐 | 호스 내의 압력이 2 bar [2 kgf/cm ²]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
| 20) 활어창 | 정판까지의 장수에 따른 압력 |
| 21) 복판타 | 1.5D 또는 2d 중 작은 값의 물높이에 따른 압력에 상당하는 압력. 이 경우 D는 배의 깊이, d는 지정된 홀수로 한다. |

마. 라목에 따른 수압시험 대신에 다음의 기밀시험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어선마다 기밀시험을 희망하는 부위, 시험압력, 시험방법, 사용할 압력계의 종류, 검사예정일자 등을 기재한 기밀시험 방안서를 받아 사전 검토 후 실시하고, 현장 참관 시 누설개소가 많거나 사전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라목에 따른 수압시험을 실시한다.

- 1) 기밀시험의 압력은 0.2bar[0.2kgf/cm²]로 한다.
- 2) 시험압력은 U자형 게이지나 2개의 원형지시압력계로 확인한다.
- 3) 누설개소의 압력은 검지액(檢知液)을 발라 확인한다.
- 4) 현장 참관 전에 조선소로 하여금 사전확인을 충분히 하게 하고 누설개소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게 한다.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1. 6. 30.>

예비검사를 받을 수 있는 어선용품(제52조제1항 관련)

1. 예비검사 대상 어선용품은 다음과 같다.

가. 선체에 관한 것

- 1) 선체구조용 재료(강재, 강재외의 금속재료, 플라스틱수지, 유리섬유, 고무포 등)
- 2) 어선의 선체(측정 길이 24미터 미만으로 한정한다)
- 3) 선미골재
- 4) 타
- 5) 타두재
- 6) 타심재
- 7) 수밀폐쇄장치

나. 기관에 관한 것

- 1) 내연기관 또는 그 기관의 중요부분(사용하는 재료에 대하여 재료시험을 받아야 하는 부품으로 한정한다) 및 실린더 블록
- 2) 선내외기(船内外機)
- 3) 선외기(船外機)
- 4) 보일러 또는 그 기관의 중요부분(사용하는 재료에 대하여 재료시험을 받아야 하는 부품으로 한정한다)
- 5) 배기터빈과급기 또는 그 기관의 중요부분(사용하는 재료에 대하여 재료시험을 받아야 하는 부품으로 한정한다)
- 6) 압력용기
- 7) 열교환기
- 8) 공기압축기(수동식 제외)
- 9) 중간축, 역전기축, 스러스트축, 지름 50밀리미터 이상의 프로펠러축, 기타 동력전달축
- 10) 축계의 클러치, 역전기, 유체커플링, 탄성커플링 또는 감속장치
- 11) 프로펠러축에 사용되는 선미관, 선미관실(선미관 방수장치)
- 12) 프로펠러 또는 그 날개
- 13) 아웃드라이버장치
- 14) 러더프로펠러장치
- 15) 워터젯추진장치
- 16) 액량계측장치
- 17) 유량계
- 18) 유가열기

- 19) 원격제어장치
- 20) 1류관용 관류(플렉시블 호스를 포함한다)
- 21) 펌프류
- 22) 밸브류
- 23) 탄성체의 고무엘리먼트

다. 배수설비에 관한 것

- 1) 빌지펌프
- 2) 선외펌프

라. 조타·계선 및 양묘설비에 관한 것

- 1) 유압조타장치
- 2) 닻
- 3) 쇄사슬
- 4) 로프
- 5) 유압펌프
- 6) 유압모터
- 7) 양묘장치
- 8) 계선장치
- 9) 비상예인장치

마. 구명설비에 관한 것

- 1) 구명정
- 2) 구조정
- 3) 구명뗏목지원정
- 4) 구명정, 구조정, 구명뗏목지원정의 추진기관
- 5) 공기자급식구명정의 공기자급장치
- 6) 구명뗏목
- 7) 진수장치
- 8) 탑승장치
- 9) 보트대빛
- 10) 보트원치
- 11) 구명부기
- 12) 구명부환(구명줄을 포함한다)
- 13) 구명조끼
- 14) 구명줄발사기(발사채 및 구명줄을 포함한다)
- 15) 방수복
- 16) 보온구

- 17) 로켓낙하산신호, 신호홍염, 발연부신호, 자기발연신호
- 18) 자기점화등
- 19) 탐조등
- 20) 구명조끼 표시등
- 21) 캐노피등
- 22) 수밀전기등(방수기능이 있는 전기등)
- 23) 구난식량·식수
- 24) 해수탈염장치
- 25) 고압가스용기의 밸브
- 26) 수압이탈장치
- 27) 워크링크
- 28) 레이더반사기
- 29) 역반사재
- 30) 노출보호복

바. 소방설비에 관한 것

- 1) 소화펌프
- 2) 소화기(휴대식포말방사기를 포함한다)
- 3) 소화장치의 부품[압력용기, 스프링클러헤드, 매니폴드(여러 개의 가지관), 모니터, 혼합기, 밸브류, 관류]
- 4) 소화제
- 5) 소화호스, 노즐
- 6) 소방원장구(개인장구, 호흡구)
- 7) 물분무방사기
- 8) 국제육상시설연결구
- 9) 화재탐지장치(탐지기, 제어반, 표시반, 경보장치 및 구성부품)
- 10) 수동화재경보장치(발신기, 표시반 및 제어반)
- 11) 가연성가스검정기
- 12) 방화용재료
- 13) 방화문
- 14) 자동폐쇄형 방화댐퍼(화재 시 연기 등을 차단하는 장치)
- 15) 고속배기장치
- 16) 플레임어레스트

사. 거주설비에 관한 것

- 1) 기계식통풍장치
- 2) 현창

- 3) 비상표시등, 탈출유도등
- 4) 비상조명장치
- 5) 공기식 매트리스

아. 항해용구에 관한 것

- 1) 선등 또는 그 부품(전구, 유리)
- 2) 음향신호장치(기적, 호중(어선위치 알림중. 이하 같다), 징 등)
- 3) 자기컴퍼스
- 4) 자이로컴퍼스
- 5) 음향측심기
- 6) 선속거리계
- 7) 회두각속도계
- 8) 도선사용사다리
- 9) 엔진텔레그라프
- 10) 재화문개폐표시장치
- 11) 누수검지장치
- 12) 홀수계측장치
- 13) 위성항법장치(GPS) 및 보정위성항법장치(DGPS)

자. 어로 및 하역 기타 작업설비에 관한 것

- 1) 크레인
- 2) 하역장치의 부품[데릭뿔, 원치, 와이어로프, 블록, 구즈넥(Goose Neck)브레이크]
- 3) 어로용 원치 또는 그 부품

차. 전기설비에 관한 것

- 1) 정격출력 5킬로와트 또는 5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의 발전기
- 2) 정격출력 1킬로와트 이상의 전동기
- 3) 정격출력 5킬로볼트 암페어 이상의 변압기
- 4) 정격출력 5킬로와트 또는 5킬로볼트 암페어 이상의 발전기에 사용되는 배전반
- 5) 정격출력 1킬로와트 이상의 전동기에 사용되는 제어기
- 6) 방폭형전기기기 및 기구
- 7) 주파수변환장치
- 8) 선박용전선

카. 기타

- 1) 승강설비 또는 그 중요부품
- 2) 냉동설비의 냉매압축기, 압력용기, 열교환기, 안전밸브

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또는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3조에 따른 어선설비에 관한 기준으로 정하는 설비나 그 부품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용품은 예비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가. 다음에서 정하는 어선용품

- 1) 원동기: 22kW(30PS) 미만의 것
- 2) 공기압축기: 수동식의 것
- 3) 중간축: 지름 60밀리미터 미만의 것
- 4) 프로펠러축: 지름 50밀리미터 미만의 것
- 5) 선미관: 지름 50밀리미터 미만의 프로펠러축에 사용되는 것
- 6) 프로펠러: 지름 700밀리미터 미만의 것
- 7) 관류(플렉시블 호스 포함): 1류관용 외의 것
- 8) 펌프류: 수동식의 것
- 9) 밸브류: 안전밸브, 선체불이밸브 및 1류관용 외의 것
- 10) 쇄사슬: 계선 또는 계류장치에 사용되는 지름 14밀리미터 미만의 것
- 11) 로프: 계선 또는 계류장치에 사용되는 다음의 로프
 - 가) 지름 14밀리미터 미만의 와이어로프
 - 나) 지름 24밀리미터 미만의 와이어로프 외의 로프
- 12) 현창: KS V ISO 1751 C급 제외
- 13) 발전기: 정격출력 5킬로와트 또는 5킬로볼트암페어 미만의 것
- 14) 배전반: 정격출력 5킬로와트 또는 5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의 발전기에 사용되는 것 외의 것
- 15) 변압기: 정격출력 5킬로볼트암페어 미만의 것
- 16) 전동기: 정격출력 1킬로와트 미만의 것
- 17) 제어기: 정격출력 1킬로와트 이상의 전동기에 사용되는 것 외의 것
- 18) 하역장치: 1톤 미만의 화물의 하역에 사용되는 것
- 19) 냉동설비(냉매압축기, 압력용기, 열교환기, 안전밸브): 사용동력이 7.5kW(10PS) 이하로서 1차냉매를 R12, R22, R404a 또는 R502로 하는 냉동설비일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용품으로서 협약 당사국 정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선급법인의 검사를 받은 어선용품

- 1) 외국에서 건조나 수리한 어선에 비치된 어선용품
- 2) 외국으로부터 도입하거나 차용한 어선에 비치된 어선용품
- 3)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어선용품

다. 다른 어선 또는 선박에 설치되어 검사를 받아오던 어선용품 및 선박용물건

(다만, 별표 16 제3호카목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

라.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에 설치하는 제1호나목의 어선용품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0. 9. 3.>

팽창식 구명설비의 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

(제52조제4항 관련)

1. 시설

가. 작업장

- 1) 천장의 높이는 4.5미터 이상, 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정비하려는 구명뗏목을 펼쳤을 때의 바닥면적보다 클 것
- 2) 구명뗏목을 들어 올려 고정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 3)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어야 하며, 충분한 조명장치를 갖출 것
- 4)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 조절장치를 갖출 것
- 5) 환기장치를 설치할 것

나. 수세장

면적은 2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수세시설을 갖출 것

다. 누설 시험장

- 1) 면적은 25제곱미터 이상일 것
- 2) 바닥은 뗏목의 고무포를 손상시키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깔 것
- 3)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어야 하며, 충분한 조명장치를 갖출 것
- 4)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 조절장치를 갖출 것
- 5) 환기장치를 설치할 것

라. 정비한 구명뗏목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중으로 겹쳐서 저장하는 것을 금한다)

마. 부품 진열장

- 1) 공구, 비품류 등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게 정비하여 놓을 수 있도록 선반식으로 되어 있을 것
- 2)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일 것

바. 사무실

면적은 15제곱미터 이상일 것

사. 위험물저장소

관계 법령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

2. 인원

가. 정비기술자

팽창식 구명설비의 제작회사 또는 정비사업장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팽창식 구명설비에 관한 정비기술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자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나. 작업원

정비기술자의 지도를 받아 정비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원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기구 및 비품류

가. 점검을 위한 기구류

- 1) 솔 등 뗏목 수세용구
- 2) 용기 분해용공구
- 3) 가스 주입장치 분해용공구
- 4) 손전지 또는 회중전등
- 5) 바닥이음부 시험을 위한 뗏목 지지대 등

나. 정비 및 보수용기구

- 1) 접착가공용구
보관용기(고무풀, 촉진제 및 용제를 포함한다), 솔, 접시저울(1킬로그램 정도의 무게 측정이 가능할 것), 빠른 건조를 위한 적외선램프 또는 드라이어, 가위, 롤, 라분대 등
- 2) 끈 및 로프 가공용구
실감개, 바늘류, 절단기
- 3) 봉제 가공용구
공업용재봉틀
- 4) 납땜 가공용구
납땜 인두
- 5) 구멍쇠 및 눌림단추 가공용구
각종 치수의 펀치 및 타구
- 6) 도장 및 솔 가공용구
- 7) 젖은 뗏목을 건조시키는 데에 충분한 온풍기
- 8) 진공펌프

다. 검사를 위한 기구

- 1) 누설시험을 위한 기구
압력계(혈압계 수은주 300밀리미터 또는 수압계), 온도계, 기압계(아네로이드형), 공기압축기 및 전동 송·배풍기
- 2) 가스용기검사를 위한 기구류
저울(20킬로그램 정도의 무게 측정이 가능할 것), 온수시험용 물탱크(용기 1개 이상의 수용이 가능한 것일 것) 및 용기내압 시험설비
- 3) 자동이탈장치 시험용구(팽창식 구멍뗏목 또는 팽창식 구멍부기의 경우로 한정한다)[하중 5킬로그램 및 하중 200킬로그램에서 시험할 수 있는 것일 것]
- 4) 그 밖의 습도계, 10미터 줄자 등

라. 그 밖의 기구류

1) 컨테이너 개방용공구

스페너, 지렛대 등

2) 그 밖에 특히 지정된 공구류

마. 보수용 비품 및 소모품

보수용 각종 고무포, 심, 끈, 밧줄류, 접착제, 용제, 도료, 인쇄잉크, 교환용부품 등

4. 자체정비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팽창식 구멍설비의 정비 기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확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1. 6. 30.>

별도건조검사 시 수행하는 선체 압력시험방법(제53조제2항 관련)

1. 입거(入渠)되거나 상가(上架)된 상태에서 압력시험을 실시한다.
2. 압력시험은 수압시험이나 기밀시험의 방법으로 하고, 다음에 따라 확인한다.
 - 가. 압력시험의 범위는 강력갑판 아래의 선체, 선루 또는 상갑판 위의 첫째 갑판실로 하며 반드시 선박검사원이 참관해야 한다.
 - 나. 물높이나 압력을 확인하고, 물이나 공기가 새지 아니하는지 확인한다.
 - 다. 압력이 걸린 상태에서 부재(部材)가 변형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 후 보강한다.
 - 라. 선체 각 부에 대한 수압시험은 다음의 방법으로 한다.

| 항 목 | 수압시험의 기준 |
|--|--|
| 1) 이중저 | 정판부터 공기관 상단까지 물높이에 따른 압력과 정판부터 격벽갑판까지의 물높이에 따른 압력 중에 큰 것에 상당하는 압력 |
| 2)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어선의 선수창(물탱크나 유탱크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 만재홀수선까지의 물높이에 따른 압력과 선수 격벽의 높이의 3분의 2까지의 물높이에 따른 압력 중 큰 것에 상당하는 압력. 다만, 그 수선 이상의 부분은 호스 내의 압력이 2bar [2 kgf/cm ²]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
| 3)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어선의 수밀 격벽의 수밀문 | 호스 내의 압력이 2 bar [2 kgf/cm ²]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
| 4) 선미창(물탱크나 유탱크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선미관구확실(선미관이 설치된 구역) | 만재홀수선까지의 물높이에 따른 압력에 상당하는 압력. 다만, 만재홀수선 이상의 부분은 호스 내의 압력이 2 bar [2 kgf/cm ²]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
| 5) 물탱크나 유탱크로 사용하는 선수창 또는 선미창 | 정판부터 다음 위치까지의 물높이에 따른 압력 중 가장 큰 것에 상당하는 압력
가) 넘침판의 상단
나) 만재홀수선 |
| 6) 디프탱크 | 다) 배의 깊이의 상부기점으로부터 정판까지의 수직거리의 3분의 2를 정판부터 상방으로 수직으로 측정한 높이 |
| 7) 축로 | 호스 내의 압력이 2 bar [2 kgf/cm ²]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
| 8) 그 밖의 수밀통로 | |
| 9) 제1급 폐쇄장치를 설치한 선루단 칸막이벽의 출입구 | |
| 10) 수밀폐쇄장치를 갖춘 갑판구(창구를 포함한다) | |
| 11) 현문, 재화문 및 현창 | 정판부터 창구 정부까지의 물높이에 따른 압력에 상당하는 압력 |
| 12) 펌프실과 겸용하지 아니하는 코퍼댐 | |
| 13) 펌프실과 겸용하는 코 | 호스 내 압력 2 bar [2 kgf/cm ²] 이상의 사수압력 |

| | |
|----|--|
| 폐담 | |
|----|--|

마. 라목에 따른 수압시험 대신에 다음의 기밀시험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어선마다 기밀시험을 희망하는 부위, 시험압력, 시험방법, 사용할 압력계의 종류, 검사예정일자 등을 기재한 기밀시험방안서를 받아 사전 검토 후 실시하고, 현장 참관 시 누설개소가 많거나 사전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라목에 따른 수압시험을 실시한다.

- 1) 기밀시험의 압력은 0.2bar[0.2kgf/cm²]로 한다.
- 2) 시험압력은 U자형 게이지나 2개의 원형지시압력계로 확인한다.
- 3) 누설개소의 압력은 검지액(檢知液)을 발라 확인한다.
- 4) 현장 참관 전에 조선소로 하여금 사전확인을 충분히 하게 하고 누설개소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게 한다.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0. 9. 3>

검사종류별 관련 도면(제3조의2제2항 및 제54조제1항 관련)

1. 건조(별도건조)검사 관련 도면

가.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인 경우

1) 총톤수 10톤 미만 어선

가) 일반배치도 또는 배의 길이, 너비, 깊이, 최대 승선인원, 격벽위치, 기관의 종류 및 출력 등이 기재된 제작사의 카달로그

나) 강재배치도 또는 재료배치도

다) 중앙횡단면도

라) 강도계산서(강화플라스틱 재질은 선체판두께측정 등에 의한 강도계산서를 말하고, 나) 및 다)의 도면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의 경우 가)의 도면

2) 총톤수 10톤 이상 어선

가) 1)의 가)부터 다)까지의 도면

나) 기관실전체장치도

다) 전기계통도(동시에 사용하는 발전기 합계용량 50kVA 이상으로 한정한다)

나.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인 경우

1) 건조사양서(별도건조검사 대상은 제외한다)

2) 일반배치도

3) 선체선도

4) 중앙횡단면도

5) 강재배치도 또는 재료배치도

6) 외판전개도(강선과 알루미늄선으로 한정한다)

7) 배수량등곡선도

8) 기관실전체장치도

9) 흡수표배치도

10) 제개구폐쇄장치도

11) 전기계통도(동시에 사용하는 발전기 합계용량이 5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2) 구조 및 배치를 나타내는 설계도면(별도건조검사 대상은 제외한다)

가) 상갑판하 선체구조도

나) 선미재 및 스트러트 구조도

다) 선루 및 갑판실 구조도

- 라) 램프게이트(연결로 출입문) 구조도(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마) 타(舵)구조도
- 바) 축계장치도
- 사) 제판장치도(갑판배판장치를 포함한다)
- 아) 냉동기기배치도, 열부하계산서 및 이에 따른 배판도(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자) 비틀림진동계산서(중간축구조도, 프로펠러축구조도, 프로펠러구조도 및 계산 관련 자료를 포함하며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차) 하역장치 배치 및 강도계산서(총톤수 300톤 이상인 어선에 설치되어 1톤 이상의 화물의 하역에 사용되는 하역장치로 한정한다)
- 카) 전기설비
 - (1) 전력조사표(동시에 사용하는 발전기 합계용량이 50kVA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 (2) 전기기기 배치도(동시에 사용하는 발전기 합계용량이 50kVA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 (3) 선동 배치도

2. 정기검사와 중간검사 관련 도면

가. 제1호의 도면

나. 승강설비에 관한 검사를 받는 경우 다음의 서류

- 1) 승강설비 장력계산서
- 2) 승강설비 배치도와 승강설비 구조도
- 3) 승강설비의 사용재료를 나타내는 서류
- 4) 승강설비의 사용방법을 나타내는 서류

다. 만재흡수선(목재만재흡수선 및 구획만재흡수선은 제외한다)에 관한 검사를 받는 어선의 경우에는 다음의 도면

- 1) 선체선도
- 2) 최상층의 전통갑판까지의 각 흡수에 대한 전배수량 및 매 1센티미터의 배수량을 나타내는 곡선도 또는 표

라.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다음의 도면

- 1) 배수량동곡선도 또는 표
- 2) 복원력교차곡선도 또는 표
- 3) 해수유입각곡선도 또는 표
- 4) 계획중량중심트림계산서

3. 임시검사 관련 도면

가. 제47조제1항에 따른 개조 또는 수리를 하려는 경우 제2호의 도면 중 해당

도면

나. 만재출수선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의 도면

- 1) 선체선도
- 2) 중앙횡단면도
- 3) 배수량동곡선도
- 4) 갑판평면도

다.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다음의 도면

- 1) 일반배치도
- 2) 중앙횡단면도
- 3) 제개구폐쇄장치도
- 4) 선체선도
- 5) 제2호라목에 따른 도면

4. 예비검사 관련 도면

가. 어선의 선체

- 1) 일반배치도
- 2) 중앙횡단면도
- 3) 재료배치도
- 4) 강도계산서(강화플라스틱 재질은 선체판두께측정 등에 의한 강도계산서를 말하며, 2) 및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톤수 10톤 미만 어선의 경우에는 강도계산서로 갈음할 수 있다)
- 5) 1)부터 4)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의 경우에는 1)의 일반배치도

나. 내연기관

- 1) 조립횡단면도 및 조립종단면도
- 2)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피스톤쿨링재킷구조도
- 3) 크랭크축(평형추 및 볼트, 커플링볼트를 포함한다) 구조도
- 4) 피스톤, 크로스헤드, 피스톤로드 및 연결봉 조립도(볼트를 포함한다)
- 5) 연료분사관 및 피복장치도
- 6) 제관장치도(연료유, 윤활유, 냉각유, 냉각수, 공기 및 유압의 각 계통을 포함하여 관의 재질, 치수, 사용압력 등을 기입한 것을 말한다)
- 7) 베드 및 스러스터블록과 기관대와의 거치상세도(주기관으로 한정한다)
- 8) 크랭크실 도출밸브의 구조 및 배치도(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9) 소기용송풍기 또는 배기터빈과급기의 조립단면도
- 10) 기관 주요 요목(종류, 형식, 연속최대출력, 연속최대회전수, 착화순서, 실린더내최대압력, 도시평균유효압력, 정미평균유효압력, 각 실린더의 왕복

운동부의 질량, 플라이휠의 중량 및 지름, 평형추의 질량, 회전반지름 및 부착위치, 배기터빈과급기의 사양 등)을 적은 것

- 11) 주요 부품의 재료 및 강도계산서
- 12) 기관진동에 관한 자료(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13) 수입신품 및 조립완성품의 내연기관(선내외기와 선외기는 제외한다)은 1), 7), 10), 12) 및 정비지침서로 한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주요 부품의 재료 및 강도계산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선내외기(船内外機) 및 선외기(船外機)

- 1) 기관 주요 요목
- 2) 외형도(기관의 출력 등이 기재된 제작사의 카달로그를 포함한다)
- 3) 거치도
- 4) 정비지침서 또는 정비표준서

라. 보일러

- 1) 기기배치도 및 전체조립도
- 2) 동체, 노통 및 헤더 등의 상세도 및 노즐상세도
- 3) 배관의 배열 및 상세도(밸브의 배치, 관의 재질, 치수 및 사용압력 등을 기입한 것을 말한다)
- 4) 공기에열기, 보일러 부착품 장치도 또는 장치선도
- 5) 안전밸브의 조립도
- 6) 자동제어 및 원격제어계통도
- 7) 보일러의 주요 요목, 주요 재료 및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마. 압력용기

- 1) 전체조립도
- 2) 동체 및 헤더 등의 상세도
- 3) 안전밸브의 조립도
- 4) 자동제어 및 원격제어 계통도
- 5) 압력용기의 주요 요목, 주요부품의 재료 및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 6) 제3종 압력용기는 1) 및 5)로 한정한다.

바. 공기압축기(수동식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 1) 조립단면도 및 크랭크축 상세도
- 2) 제어 및 안전장치계통도
- 3) 제관장치도(윤활유, 냉각수 및 압축공기의 각 계통을 포함하여 관의 재질, 치수 및 사용압력 등을 기입한 것을 말한다)
- 4) 공기압축기의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 및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사. 축계장치

- 1) 전체조립도 또는 축계장치도
- 2) 추력축, 중간축, 프로펠러축 및 동력전달축의 구조도
- 3) 커플링 및 커플링볼트 구조도
- 4) 선미관, 선미관베어링, 스트럿베어링 및 선미관실장치구조도
- 5) 프로펠러 구조 및 상세도
- 6) 주요 부품의 재료, 주요부품의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 7) 비틀림진동계산서(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아. 축계의 클러치, 역전기, 유체 커플링 또는 탄성 커플링

- 1) 조립단면도
- 2) 주요 부분의 구조도
- 3) 각 장치의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 및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자. 감속장치

- 1) 조립단면도
- 2) 각 기어, 기어축, 플렉시블 커플링, 플렉시블 축 등 주요 부분의 구조도
- 3) 감속기어장치의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 및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차. 아웃드라이버 및 러더프로펠러장치

- 1) 조립단면도
- 2)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 주요 부품의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카. 워터제트추진장치

- 1) 조립단면도
- 2) 임펠러, 주축, 물흡입관로부, 노즐, 디플렉터, 리버서의 구조도
- 3)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 주요 부품의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 4) 비틀림진동계산서(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타. 펌프류

- 1) 조립단면도
- 2)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 주요 부품의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파. 액량측정장치, 유량계, 유가열기

- 1) 조립단면도
- 2)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에 관한 자료

하. 관 및 밸브류

- 1)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 2)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 사용유체·압력·온도에 대한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거. 원격제어장치

- 1) 원격제어 및 안전장치계통도

2) 제어반의 조립단면도 및 결선도

너. 유압조타장치

1) 기기배치도 및 전체조립도

2) 조정 및 안전장치계통도

3) 제관장치목록표

4) 조타장치의 주요 요목, 취급설명서, 주요 부품의 재료 및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더. 구명정·구조정·구명뗏목의 데빃

1) 전체구조도(주요재료 내용을 포함한다)

2) 하중에 대한 강력계산서

러. 원치

1) 기기배치도 및 전체조립도

2) 조정 및 안전장치계통도

3) 제관장치도(관의 재질, 치수 및 사용압력 등을 적어 넣은 것을 말한다)

4) 하중에 대한 강력계산서

5) 원치의 주요 요목, 취급설명 및 주요 부품의 재료의 사양

머. 구명정 또는 구조정

1) 선체선도

2) 재료배치도

버. 발전기 또는 전동기

1) 전체조립도

2) 내부접속도

3) 회전축상세도

4) 발전기 또는 전동기의 주요 요목, 특성 및 축재료의 사양

서. 변압기

1) 전체조립도

2) 내부접속도

3) 변압기의 주요 요목 및 특성자료

어. 배전반 또는 제어기

1) 전체조립도

2) 내부접속도

3) 배전반 또는 제어기의 주요 요목 및 특성자료

저. 냉동장치

1) 제어 및 안전장치계통도

2) 냉매압축기의 조립단면도 및 크랭크축 상세도

3) 냉동기의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 및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처, 그 밖의 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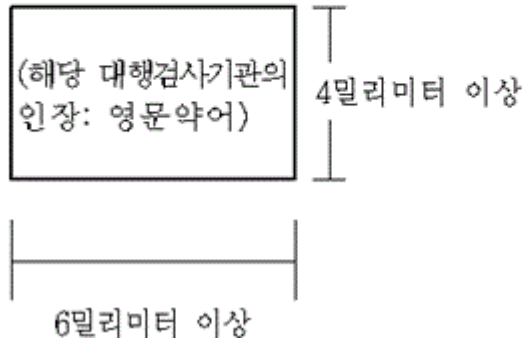
1) 설비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2) 설비의 주요 요목, 재료 및 강도가 요구되는 것은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8. 5. 1.>

복원성 승인 표시, 도면승인 표시 및 건조검사, 예비검사, 검정, 건조(제조·정비)

확인의 합격표시(제3조의2제3항, 제54조제2항 및 제65조 관련)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18. 5. 1.>

정기검사 준비사항(제55조제1항제1호 관련)

1. 선체에 관한 준비

가. 입거(入渠) 또는 상가(上架)를 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비금속재(목재 및 강화플라스틱) 어선 및 알루미늄선과 총톤수 10톤 미만인 강선을 거선한 경우
- 2) 입거 또는 상가의 시설이 없는 호수·하천·항내에서만 조업하는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인 어선의 선저를 검사할 수 있도록 수면 밖으로 끌어올린 경우

나. 타를 들어 올리거나 빼낼 것

다. 선체에 붙어있는 해초·조개류 등을 깨끗이 떼어낼 것

라. 목선의 선체 외판에 덧붙인 선체보호용 포판의 일부를 떼어낼 것

마. 선체 내부에 있는 화물 및 고정밸러스트를 떼어낼 것

바. 선체 내부의 선체에 고착되지 아니하는 물품을 정리할 것

사. 탱크의 맨홀을 열어 놓고 내용물 및 위험성가스를 배출할 것

아. 화물구획의 내장판의 일부를 떼어낼 것

자. 갑판피복 및 선저 시멘트의 일부를 떼어낼 것

차. 강제선체 주요부의 녹을 떨어내고 두께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할 것

카. 선체 내외부의 적당한 장소에 안전한 발판을 설치할 것

타. 재료시험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파. 비파괴검사의 준비를 할 것(해양수산부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 생략할 수 있다. 이하 제2호아목의 비파괴검사의 준비에 관하여 같다)

하. 압력시험 및 하중시험의 준비를 할 것

거. 수밀문·방화문 등 폐쇄장치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2. 기관에 관한 준비

가. 주기관

1) 내연기관

가) 실린더커버를 떼어내고 피스톤 및 실린더라이너를 들어낼 것

나) 실린더커버·피스톤 및 실린더의 냉각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분해할 것

다) 크랭크암의 개폐량을 잴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고속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크랭크축의 베어링의 상반(上盤)과 크로스헤드핀 및 크랭크핀의 베어링을 떼어낸 후 크랭크축을 회전할 수 있도록 하고, 크랭크축과 크랭크암

과의 접합부를 검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크랭크축을 들어올려 놓을 것
 마) 배기터빈과급기 및 소기장치의 내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작동
 부분을 들어낼 것

바) 작동에 직접 관계있는 중요한 밸브를 분해할 것

나. 프로펠러축계

- 1) 프로펠러를 빼내고 프로펠러축을 뽑아낼 것
- 2) 각 베어링의 상반 또는 커버 및 스러스트패드를 빼내고 각 축을 회전할 수 있도록 할 것
- 3) 선미관 후단의 경우 축과 지면재의 틈을 잴 수 있도록 할 것
- 4) 가변 피치프로펠러의 프로펠러 내부의 변절기구 또는 회전 부분을 검사할 수 있도록 분해하고 각 날개를 떼어낼 것
- 5) 가변 피치프로펠러에 부착된 조정밸브 및 변절유뎀프를 검사할 수 있도록 분해할 것
- 6) 동력전달장치를 분해할 것
- 7) 워터제트 추진장치 주축의 상태를 검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준비

할 것

가) 커플링 볼트를 분해할 것

나) 선수축 및 선미축 베어링커버를 떼어낼 것

다) 선수축 밀봉장치의 주요 부분을 개방할 것

라) 스러스트 베어링을 개방할 것

마) 임펠러 보스와 주축의 접촉부분을 분해할 것(키 및 스플라인으로 부착한 경우)

다. 보일러 및 압력용기

- 1) 보일러의 내부 및 화염이 닿는 부분과 압력용기의 내부를 청소한 후 맨홀, 청소구멍 및 검사구멍의 커버를 떼어내고, 부착된 중요한 밸브 및 록을 분해할 것
- 2) 보일러의 스모크박스도어를 열어 놓을 것
- 3) 보온재 등 보일러의 바깥 부분을 떼어내고 판 및 관의 두께를 잴 수 있도록 할 것

라. 보조기관

- 1) 발전기(어선의 추진 및 항해에 관계있는 것에 한정한다) 또는 어선의 추진에 관계있는 보기(補機)를 구동하는 보조기관은 가목의 준비를 할 것
- 2) 1) 외의 보조기관으로서 어선의 항해에 관계있는 보기를 구동하는 보조기관은 실린더커버, 크랭크축베어링의 상반, 크랭크핀베어링, 그 밖의 주요한 베어링을 떼어낼 것

마. 보기 및 관장치

- 1) 보기의 내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작동 부분을 빼낼 것
- 2) 연료유탱크, 여과기, 밸브, 콕, 그 밖의 관장치의 내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것

바. 비품은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사. 재료시험, 용접시험, 평형시험, 축기시험 및 육상 시운전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아. 비파괴검사의 준비를 할 것

자. 압력시험, 효력시험 및 도기시험의 준비를 할 것

차. 가목 및 라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경보장치 및 안전장치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 다만, 본선에 거처된 지 5년 미만의 기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3. 배수설비에 관한 준비

가. 펌프의 플런저, 피스톤, 임펠러, 그 밖의 작동 부분을 빼내고, 밸브케이싱을 분해할 것

나. 최고 항해흘수선 이하에서 선외로 통하는 밸브 및 콕을 분해할 것

다. 로즈박스 및 머드박스를 분해할 것

라. 압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4. 조타, 계선 및 양묘설비에 관한 준비

가. 닻, 닻쇠사슬 또는 로프와 계선용 로프를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나. 재료시험 및 압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5. 전기설비에 관한 준비

가. 재료시험, 방수시험, 방폭시험 및 완성시험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절연저항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6. 어로·하역이나 그 밖의 작업설비에 관한 준비

가. 원치 내부의 주요 부분을 검사할 수 있도록 분해할 것

나. 하역장치의 하중시험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재료시험 및 압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7. 구멍 및 소방설비에 관한 준비

- 가. 떼어내어 검사하여야 하는 것은 떼어내어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 나. 재료시험 및 압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다.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8. 거주 및 위생설비에 관한 준비

-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9. 승강설비에 관한 준비

- 가. 호이스트(卷上機) 내부의 주요 부분을 검사할 수 있도록 분해할 것
- 나. 재료시험 및 하중시험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다.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10. 냉동·냉장 및 수산물처리가공설비에 관한 준비

-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11. 항해설비에 관한 준비

- 가. 떼어내어 검사하여야 하는 것은 떼어내어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 나.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11의2. 복원성시험에 관한 준비(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 복원성시험의 장소는 바람·파랑·조류 등의 영향이 적은 곳을 택할 것
- 나. 복원성시험 실시 중에 예상되는 외력에 따른 영향을 피할 수 있도록 계류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다. 어선 완성 시에 탑재할 설비나 그 밖의 물건은 선내의 정위치에 탑재할 것
- 라. 어선 완성 시에 탑재하지 않는 설비나 그 밖의 물건으로서 복원성시험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선내에서 제거할 것
- 마.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목과 라목에 따르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위치에 탑재하지 않았거나 제거하지 못한 물건에 대하여 그 중량 및 탑재 위치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작성할 것
- 바. 선내의 모든 탱크를 비우거나 채우고, 탱크 외의 물·기름 등을 제거할 것
- 사. 부득이한 사정으로 탱크를 비우거나 채우기 곤란한 경우에는 탱크 내 액체의 자유표면에 따른 영향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 자료를 작성할 것
- 아. 선내의 이동하기 쉬운 탑재물은 복원성시험 중에 이동하지 않도록 고정할 것
- 자. 해당 어선의 계획트림 외에는 가급적 트림을 적게할 것
- 차. 해당 어선을 횡경사 시키기에 적당한 중량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정확하

게 측정된 이동중량물을 어선에 탑재할 것

카. 횡경사각의 측정을 위하여 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추의 길이를 길게 하고, 그 동요를 적게 하기 위한 시험수조를 준비할 것

타. 동요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의 횡요각을 가급적 크게 할 수 있는 인원이나 적당한 용구를 준비할 것

12. 만제홀수선에 관한 준비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13. 해상 시운전의 준비

14.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에 대하여는 제2호자목(효력시험에 해당한다), 제3호마목, 제4호다목, 제7호다목 및 제11호나목 외의 검사준비를 면제한다.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18. 5. 1.>

중간검사 준비사항(제55조제1항제2호 관련)

1. 제1종 중간검사

가. 선체에 관한 준비

별표 8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카목(선체 외부로 한정한다), 거목의 준비를 할 것

나. 기관에 관한 준비

1) 주기관

가) 내연기관

- (1) 실린더커버를 떼어낼 것
- (2) 크랭크암의 개폐량을 잴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고속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크랭크축의 베어링의 상반 및 크랭크핀베어링을 떼어낸 후 크랭크축을 회전할 수 있도록 하고, 크랭크축과 크랭크암과의 접합부를 검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크랭크축을 들어올려 놓을 것
- (4) 배기터빈 과급기 및 소기장치의 내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것

2) 프로펠러축계

가) 프로펠러를 빼내고 프로펠러축을 뽑아낼 것

나) 각 축 베어링의 상반 또는 커버 및 스러스트베어링을 떼어내고 각 축을 회전할 수 있도록 할 것

다) 선미관 후단에 있어서 축과 지면재와의 틈을 잴 수 있도록 할 것

라) 가변 피치프로펠러의 프로펠러 내부의 변질기구 또는 회전 부분을 검사할 수 있도록 분해하고, 날개를 한 장 떼어낼 것

마) 동력전달장치를 분해할 것

3) 보일러

가) 보일러의 내부 및 화염이 닿는 부분과 압력용기의 내부를 청소한 후 맨홀, 청소구멍 및 검사구멍의 커버를 떼어내고, 부속된 중요한 밸브 및 록을 분해할 것

나) 보일러의 스모크박스도어를 열어 놓을 것

다) 보온재 등 보일러 바깥 부분의 일부를 떼어내고, 판과 관의 두께를 잴 수 있도록 할 것

4) 발전기(어선의 추진 및 항해에 관계 있는 것에 한정한다) 또는 어선의 추진에 관계있는 보기를 구동하는 보조기관은 1)의 준비를 할 것

5) 보기 및 관장치

- 가) 보기의 내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작동 부분을 빼낼 것
- 나) 연료유탱크, 여과기, 밸브, 콕, 그 밖의 관장치의 내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것
- 6) 비품은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 7) 효력시험 및 도기시험의 준비를 할 것
- 8) 1) 및 4) 기관에 대해서는 경보장치 및 안전장치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 다만, 본선에 거치된 지 5년 미만의 기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다. 배수설비에 관한 준비

별표 8 제3호의 준비를 할 것

라. 조타, 계선 및 양묘설비에 관한 준비

돛, 돛 쇠사슬 또는 로프와 계선용 로프를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마. 전기설비에 관한 준비

절연저항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바. 구멍 및 소방설비에 관한 준비

1) 떼어내어 검사하여야 하는 것은 떼어내어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2)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사. 거주 및 위생설비에 관한 준비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아. 냉동, 냉장 및 수산물처리가공설비에 관한 준비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자. 항해설비에 관한 준비

떼어내어 검사하여야 하는 것은 떼어내어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차. 만재흡수선에 관한 준비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2. 제2종 중간검사

가. 수밀문·방화문 등 폐쇄장치에 대한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나. 기관, 배수설비, 조타설비, 구멍 및 소방설비, 거주 및 위생설비, 항해설비는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다. 전기설비는 절연저항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10] <신설 2009.12.14>

임시항행검사 준비사항(제55조제1항제5호 관련)

1. 선체에 관한 준비
 - 가. 만재흡수선의 표시를 검사할 수 있도록 안전한 발판을 설치할 것(해당 어선에 한정한다)
 - 나. 수밀문·방화문 등 폐쇄장치에 대한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2. 기관에 관한 준비
 -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3. 구명 및 소방설비에 관한 준비
 -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4. 거주 및 위생설비에 관한 준비
 -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5. 항해설비에 관한 준비
 -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6. 해상 시운전의 준비
7.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에 대하여는 제2호(효력시험만 해당한다), 제3호 및 제5호 외의 검사준비를 면제한다.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13.3.24>

건조검사 준비사항(제55조제1항제6호 관련)

1. 선체에 관한 준비

- 가. 선체 내외부의 적당한 장소에 안전한 발판을 설치할 것
- 나. 재료시험, 비파괴검사(비금속제 어선과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강선을 제외한다), 압력시험 및 하중시험의 준비를 할 것

2. 기관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비파괴검사(해양수산부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 생략할 수 있다), 용접시공시험, 평형시험, 압력시험, 효력시험, 축기시험, 도기시험 및 육상 시운전의 준비를 할 것

3. 배수설비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압력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4. 조타·계선 및 양묘설비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압력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5. 전기설비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방수시험, 방폭시험, 완성시험, 절연저항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6. 만재흡수선의 검사에 관한 준비

- 가. 만재흡수선의 표시를 검사할 수 있도록 안전한 발판을 설치할 것
- 나. 수밀문·방화문 등의 폐쇄장치의 효력시험의 준비

7.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에 대하여는 제1호나목(재료시험 중 재료확인만 해당한다), 제3호(효력시험만 해당한다) 및 제4호(효력시험만 해당한다) 외의 검사준비를 면제한다.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13.3.24>

별도건조검사 준비사항(제55조제1항제7호 관련)

1. 선체에 관한 준비
 - 가. 선체 내외부의 적당한 장소에 안전한 발판을 설치할 것
 - 나. 비파괴검사(비금속제 어선과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강선을 제외한다), 압력시험 및 하중시험의 준비를 할 것
2. 기관에 관한 준비

비파괴검사(해양수산부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 생략할 수 있다), 평형시험, 압력시험, 효력시험, 축기시험, 도기시험 및 육상 시운전의 준비를 할 것
3. 배수설비에 관한 준비

압력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4. 조타·계선 및 양묘설비에 관한 준비

압력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5. 전기설비에 관한 준비

완성시험, 절연저항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6. 만제홀수선의 검사에 관한 준비
 - 가. 만제홀수선의 표시를 검사할 수 있도록 안전한 발판을 설치할 것
 - 나. 수밀문·방화문 등의 폐쇄장치의 효력시험의 준비
7.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에 대하여는 제1호나목, 제3호(효력시험만 해당한다) 및 제4호(효력시험만 해당한다) 외의 검사준비를 면제한다.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21. 6. 30.>

예비검사 준비사항(제55조제1항제8호 관련)

1. 선체에 설치할 어선용품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압력시험, 비파괴검사 및 하중시험의 준비를 할 것.
2. 기관에 설치할 어선용품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비파괴검사, 용접시공시험, 평형시험, 압력시험, 효력시험, 축기시험, 도기시험 및 육상 시운전의 준비를 할 것.
3. 배수설비, 조타·계선·양묘설비에 설치할 어선용품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압력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4. 전기설비에 설치할 어선용품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방수시험, 방폭시험, 완성시험, 절연저항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5. 어로·하역 그 밖의 작업설비에 설치할 어선용품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비파괴검사, 하중시험, 압력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6. 구멍·소방설비 및 거주설비에 설치할 어선용품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압력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7. 승강설비에 설치할 어선용품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하중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8. 냉동·냉장 및 수산물처리가공설비에 설치할 어선용품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방수시험, 압력시험, 기밀시험, 진공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9. 항해설비에 설치할 어선용품에 관한 준비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10. 개조, 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용품에 관한 준비
별표 8 정기검사 준비사항 중 해당 어선용품에 관한 검사준비를 할 것.
11. 예비검사 준비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다음에 따른다.
 - 가. 제52조제3항의 적용기준은 법 제3조에 따른 어선설비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KS), 국제표준규격(ISO) 또는 협약을 적용할 수 있다.
 - 1) 법 제3조에 따른 어선설비로서 어선설비에 관한 기준 및 형식승인시험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
 - 2) 협약이 채택되어 시행될 예정인 경우
 - 3) 협약이 시행되었으나 국내기준에 수용되지 아니한 경우
 - 다. 예비검사 시 시험을 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담당 검사원이 참관하여 실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기관·검사기관에서 시험하는 경우
- 2)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에서 시험하는 경우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 2021. 6. 30.>

선체두께 측정범위 및 측정방법 등(제55조제3항 관련)

1. 두께측정의 범위

가. 선령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어선

선수부, 기관구역 및 선체중양부 0.4L 간의 각각의 1단면에 대하여 선체 주요부재의 판두께를 측정한다(“L”은 배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선령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어선

선수부 및 기관구역의 1단면과 선체중양부 0.4L 간의 3단면, 기관실의 전단·후단 격벽 및 해수흡입구(SEA CHEST)에 대하여 선체 주요부재의 판두께를 측정한다.

다. 선령 30년 이상의 어선

위의 나목의 측정범위에 선미부 1단면을 추가하여 측정한다.

2. 두께측정방법

가. 두께측정 실시 전에 선박검사원, 어선소유자 및 두께측정업체가 참석한 회의를 개최하여 두께측정 준비사항, 두께측정의 범위, 두께측정 요원의 자격, 장비의 검교정 및 그 밖의 세부사항 등을 결정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두께측정 회의록을 작성한다.

- 1) 회의일정 및 참석자
- 2) 측정일정, 조건 및 범위
- 3) 쇄모한도
- 4) 선박검사원, 두께측정 요원 및 어선소유자와의 연락 체계
- 5) 두께측정업자가 제공하여야 할 서류
- 6) 특기사항 등

나. 두께측정은 각 단면당 10포인트 이상을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점의 수는 어선의 규모에 따라 적절히 증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선체중양부 0.4L 간의 측정범위에 기관구역 길이의 100분의 50 이상이 중첩될 경우 기관구역은 선체중양부 0.4L 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해양수산부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두께측정업체가 두께측정을 실시한 후 선박검사원은 두께측정 결과치에 대하여 무작위로 전체 두께측정 부위의 100분의 5 이상을 확인하고 그 중 100분의 10 이상이 기록치와 다를 경우 전체 측정치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3. 쇄모한도

선체 주요부재의 쇄모한도는 다음에 따른다. 다만, 쇄모한도를 초과한 경우로서 측정두께가 규정두께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재명칭 | 쇄모한도 |
|------|------|
|------|------|

| | |
|--|----------------------------------|
| 가. 외판, 강력갑판, 강력갑판 및 현측 후판상의 중통부재, 디프탱크의 격벽판, 내저판 | 원래 두께의 20퍼센트 + 1밀리미터 이내 |
| 나. 이중저능판, 거더, 큰 골재의 웹 및 먼재 | 원래 두께의 25퍼센트 이내 |
| 다. 작은 골재의 웹, 먼재 및 브래킷, 수밀 격벽판(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칸막이벽의 판), 유효갑판, 창구덮개, 창구보 | 원래 두께의 30퍼센트 이내 |
| 라. 창내능골의 웹 및 브래킷 | 원래 두께의 25퍼센트 또는 2.5밀리미터 중 큰 값 이내 |
| <p>비고</p> <p>가. 작은 골재란 다른 보강재를 지지하지 아니하는 골재부재를 말한다.</p> <p>나. 원래두께는 도면상의 두께를 말하며, 도면상의 두께와 본선의 두께가 다를 경우 본선의 두께를 말한다.</p> <p>다. 창내능골의 웹 및 브래킷이 내장재로 견고히 부착 시공되어 부식의 우려가 낮고 내장재를 제거하지 않고는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 창내능골의 웹 및 브래킷에 대한 두께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p> | |

4. 두께측정 결과의 조치 및 기록 등

- 가. 두께측정 결과가 제3호에 따른 선체 주요부재의 쇠모한도를 초과하거나 과도한 부식이 발견된 부분에 대하여는 신환 등 수리하여 쇠모한도 이내가 되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 “과도한 부식”이란 과도한 부식이 있다고 의심되는 부위의 측정치와 의심되는 부위가 아닌 구역의 가장 큰 측정치를 비교하여 그 차이가 제3호에 따른 쇠모한도를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 나. 두께측정 업체가 측정한 결과는 측정자 및 담당 선박검사원이 서명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15] <개정 2021. 6. 30.>

수중검사준비와 그 검사방법 등(제56조제5항 관련)

1. 수중검사준비

- 가. 어선은 가능한 한 경하(輕荷)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나. 검사장소는 조류가 약하고 파고가 낮으며 수면 밑의 시계가 양호한 장소로서 잠수부가 수중검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에 충분한 수심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 다. 선박검사원은 다음의 도면을 준비하여 어선소유자와 수중검사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 1) 일반배치도
 - 2) 외판전개도(강선 및 알루미늄선으로 한정한다)

2. 수중검사방법

- 가. 수중검사는 다음 부위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 1) 만재흡수선하의 선체외판
 - 2) 시체스트(Sea Chest: 해수 유입구), 개구, 선미재 및 빌지킬(Bilge Keel: 어선이 흔들리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측과 선저 사이의 만곡부에 설치된 얇고 긴 판)
 - 3) 프로펠러축 스트럿, 타 및 부착품
 - 4) 프로펠러 및 로프가드
 - 5) 스러스터
 - 6) 선미관 베어링 틈새(해수유회) 및 타의 베어링 틈새
- 나. 선박검사원은 수중검사 전에 검사준비 사항, 사용장비의 작동상태, 각종 측정 장비의 검정·교정 상태 및 잠수부의 자격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다. 선박검사원은 본선에 대한 상황을 사전에 청취하고 잠수부가 잠수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할 사항 및 측정사항 등 필요한 검사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라. 잠수부는 선박검사원 참관하에 수중검사를 하여야 하며, 어선소유자는 해당 수중검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 마. 잠수부는 수중검사 시 선박검사원과 서로 통신을 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 바. 선박검사원은 수중사진 촬영, 수중비디오 촬영 또는 모니터 등에 따라 검사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사. 잠수부는 수중검사가 끝나면 다음 사항이 포함된 수중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어선소유자와 선박검사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선박검사원은 검사결과를 어선소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일반사항

가) 어선 요목

나) 검사 일정

2) 어선 상태

3) 해상 상태

4) 수중검사업체 및 수중검사자

5) 수중검사장비 명칭

6) 검사 내용

7) 검사 결과

3. 수중검사를 수행하는 요원의 자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잠수기능사 자격을 받은 자로써 수중검사를 수행하는 보조원으로 1년 이상의 경력(최소 10회 이상의 수중검사를 수행한 것을 말한다)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16] <개정 2023. 12. 18.>

검사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제56조제6항 관련)

1. 검사준비사항 중 프로펠러축계의 발출검사준비의 조정은 다음에 따른다.
 - 가. 제1종 축: 전회의 발출검사 완료일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회의 탐상시험방법이 자분탐상시험 또는 초음파탐상시험에 따른 방법으로 집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회의 발출검사 완료일부터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제2종 축: 전회의 발출검사 완료일부터 36개월(총톤수 10톤 미만 어선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탐상시험방법은 자분탐상시험 또는 초음파탐상시험에 따른 방법에 따른다.
 -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프로펠러축계에 대하여는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액체탐상시험으로 할 수 있다.
 - 1) 지름 100밀리미터 미만의 제2종 프로펠러축계
 - 2) 스테인리스강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비자성체 재질의 프로펠러축계
 - 라. 총톤수 10톤 미만 어선 및 제3호카목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의 프로펠러축계는 선미관 후부 또는 스트럿베어링 내면 상부와 축과의 틈새가 다음에서 정한 값 이내의 경우에는 별표 8 정기검사 준비사항 중 제2호나목 및 별표 9 중간검사 준비사항 중 제1호나목2)에 따른 검사의 준비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총톤수 5톤 이상 어선에 대한 검사의 준비는 「남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남시어선으로 그 어선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생략할 수 있다.
 - 1) 프로펠러축의 지름이 23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6밀리미터
 - 2) 프로펠러축의 지름이 230밀리미터 초과 30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8밀리미터
 - 3) 프로펠러축의 지름이 305밀리미터 초과인 경우: 9.5밀리미터
2. 검사준비사항 중 기관개방검사와 관련한 별표 8 정기검사준비사항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검사하여 5년 주기 내에 완료되도록 하는 검사(이하 "기관계속검사"라 한다)의 방법을 어선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8 정기검사준비사항 및 별표 9 중간검사준비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기관계속검사 방법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가. 기관계속검사(CMS: Continuous Machinery Survey) 방법
 - 1) 일반사항

기관계속검사 방법은 어선에 설치된 기관에 대하여 적용하며, 반드시 정기적검사 시에 시행할 필요는 없고 어선소유자가 검사준비한 때에 수시로 임시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검사시기를 초과한 항목에 대한 검사는 차기 정기적검사 시기를 초과할 수 없다.
 - 가) 검사의 신청

기관계속검사 방법을 적용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기관계속검사 수검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관계속검사 수검목록

기관계속검사를 처음으로 시행하는 경우 선박검사원은 어선소유자가 제출한 기관계속검사 수검계획서를 참조하여 기관계속검사 수검목록을 작성하고, 이후 기관계속검사를 시행한 경우 해당 항목란을 수정하여 어선소유자에게 송부한다. 어선소유자는 최근의 기관계속검사 수검목록을 본선에 보관하고 선박검사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수검계획서

(1) 어선소유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 수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원칙적으로 기관계속검사 대상 전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나) 검사의 개시 시기는 최초 정기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다음 검사로 하고 다음 회의 정기검사 시기에 완료되도록 함

(다) 매년 검사하는 항목 수는 거의 균등하게 할 것

(2) 위 (1)에 정한 수검계획서는 본선의 기관보수정비계획서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이 수검계획서는 시행과정에서 보수정비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2) 기관계속검사 적용대상 기관 및 검사요령

가) 기관계속검사 적용대상 기관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계속검사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정기직검사 시에 수행하여야 한다.

(1) 주기관의 크랭크 개폐량의 측정 및 거치볼트의 점검

(2) 증기관장치

(3) 각종 안전장치의 효력 및 성능시험

(4) 예비품

(5) 기관구역무인화선의 효력시험

| 검사 항목 | 세부 사항 |
|-------------|--|
| (가) 주기 디젤기관 | 실린더커버, 실린더라이너, 피스톤(피스톤 핀 및 피스톤로드를 포함한다), 크로스헤드 (핀, 베어링 및 가이드를 포함한다), 연접봉, 크랭크 축 및 베어링, 캠축 및 구동장치, 과급기, 소기펌프 또는 블로어, 공기냉각기, 부속 중요 펌프(윤활유, 연료유, 냉각수) |
| (나) 주기 증기터빈 | 터빈 로터, 블레이드, 베어링, 케이싱, 노즐, 노즐밸브, 조종밸브 |
| (다) 보조기관 | 발전기(비상용은 제외한다) 및 중요보기(어선의 추진, 인명과 어선의 안전 및 어선의 용도에 관계가 있는 보기)를 구동하는 보조기관을 주기에 준하여 검사 |

나) 기관계속검사 적용대상 기관의 검사방법

- (1) 중요 보기가 2대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간격으로 교대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발전기 구동 내연기관 및 빌지펌프 등은 가능한 한 정기 및 중간검사 시에 시행하도록 한다.
- (2) 각 기관별 검사간격은 5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3) 검사한 개소에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는 상세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다) 기관장이 점검한 기관에 대한 확인검사

기관의 보수 및 유지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어선의 경우 선내 보수작업으로 항해 중에 개방하여 기관장이 점검한 기관에 대하여는 다음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 기관계속검사를 위한 개방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또한, 입항 중에 개방한 기관에 대하여도 그 항구에서 선박검사원에 의한 검사가 대단히 곤란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급할 수 있다.

(1) 기관장의 자격

기관장은 등록국 또는 선적국의 최상급 면허를 소지하고 있거나 기관장으로서 3년 이상 승선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같은 형태의 추진기관(주 내연기관 또는 주 터빈을 말한다)을 갖는 어선에 적어도 1년 이상 승선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확인검사

기관장에 의하여 점검된 기관은 원칙적으로 점검일부터 5개월 이내에 선박검사원에 의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작동상태에서 기관을 검사한다.

(나) 기관 Log book의 관련 기재사항 또는 정비기록(인정 가능한 전산기록 등을 말한다)을 조사하고 점검을 시행한 기관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다) 기관장은 점검시기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선박검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관장의 서명 및 면허장번호

② 점검 연월일 및 장소

③ 점검 항목 및 결과

(라) 선박검사원이 기관장보고서 및 기관의 현상을 조사한 결과 개방하여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개방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3) 기관장 점검의 대상기관

기관장 점검의 대상기관 및 대상제외 기관은 다음 표에 따른다. 다만, 기관장 점검 대상기관 중 주 내연기관의 각 부품 및 주 발전기 구동용 내연기관에 대하여는 기관계속검사 2순회 중 적어도 1순회 이상은 선박검사원에 따른 개방검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 기관장 점검 대상기관 | 기관장 점검 대상 제외 기관 |
|---|---|
| (1) 주 내연기관(다만, 우측란 1항 항목은 제외한다) | (1) 주 내연기관의 크랭크축 및 베어링, 크랭크핀 볼트 및 캠축 구동장치 |
| (2) 보조 내연기관(다만, 비고란에 제시하는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2) 증기터빈(주, 보조) |

※ 비교: 보조 내연기관의 기관장 점검은 다음에 따른다.

- (1) 기관을 개방하고 모든 실린더, 실린더라이너, 실린더커버, 부속밸브, 피스톤, 피스톤링, 연접봉과 상하베어링, 피스톤핀, 캠축 구동장치, 과급기, 공기냉각기, 크랭크케이스와 도어, 기관거치 볼트, 크랭크케이스 과압 방지장치에 대하여 검사되어 있을 것
- (2) 모든 메인베어링의 상반부를 개방하고 하반부 메탈은 1, 2개를 들어내어 검사되어 있을 것
- (3) 크랭크 핀 및 저널의 균열 유무가 검사되어 있을 것. 특히 필릿부와 유공, 오일 그루브의 부근을 주의하고 필요하면 액체침투탐상법에 따른 점검을 시행할 것
- (4) 크랭크 압의 개폐량을 측정하고 기록되어 있을 것
- (5) 실린더라이너는 마모량을 측정하고 기록되어 있을 것
- (6) 부속의 윤활유 냉각기, 기관부착의 윤활유 펌프나 냉각수 펌프 등이 개방점검되어 있을 것
- (7) 안전장치의 작동이 양호하다고 확인되어 있을 것
- (8) 크랭크 핀볼트의 사용시간이 기록되어 있을 것

라) 기관계속검사 방법의 취소

어선소유자가 기관계속검사 방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취급하며, 기관계속검사가 이 방법대로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관계속검사 방법의 적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다음 정기검사 이전에 그 검사 간격이 5년을 초과하는 기관계속검사 대상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지난번 검사일부터 5년째의 시점 또는 그 이전에 그 기관들의 검사를 시행한다.

(2) 다음 정기검사를 할 때에는 정기검사에서 요구되는 모든 항목의 검사를 시행한다.

3) 기관계속검사 시 기관의 일련번호 부여방법

동일 기관이 2대 이상 비치된 경우의 일련번호 부여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가) 현존선의 경우 원칙적으로 각 기관의 명패(Name Plate) 번호 또는 본선에서 사용하는 번호와 통일시킨다.

나) 본선의 기관번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신조선에서 아직도 기관의 번호배열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배열하도록 어선소유자 또는 조선소에 권유하여 이 부여 방법과 일치하도록 한다.

- (1) 우현에서 좌현으로
- (2) 선수에서 선미로
- (3) 위에서 아래로

나. 최초의 정기검사 시의 기관계속검사 방법 적용

- 1) 기관계속검사는 원칙적으로 최초 정기검사 완료 후 다음 검사 시부터 시작하여 다음 회의 정기검사에서 완료하도록 되어있으나 어선소유자의 요청이 있고 또한 선박검사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초 정기검사 시부터 기관계속검사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정부 등에서 실시한 검사사항을 고려하여 다음 검사 시에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 시행하고 검사보고서에는 기관계속검사 적용어선임을 반드시 명확하게 기록한다. 만일 다음 검사 시

에 반드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사항란에 기입한다.

2) 현존선으로서 새로 기관계속검사 방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령에 따른다.

가) 정기검사 후 첫번째의 중간검사 또는 그 이전의 임시검사 시기부터 기관계속검사로 전환하는 경우는 즉시 정규순환으로 바꿀 수 있다.

나) 정기검사 후 첫 번째의 중간검사와 두 번째 중간검사 사이에 전환하는 경우는 위 가)와 같이 취급한다.

다) 정기검사 후 두 번째의 중간검사 시기부터 제1종 중간검사 시기로 전환하는 경우는 다음 회의 정기검사까지에 모두 마친 후에 즉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정기검사 후 제1종 중간검사 또는 그 이후에는 전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검사 준비사항 중 그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최초의 정기검사를 할 때에 차용·도입·검사기관 변경·등록기관 변경한 어선과 재등록 어선에 대하여는 별표 8 정기검사 준비사항 중 제1호타목·제2호사목·제4호나목·제5호가목·제6호다목·제7호나목 및 제9호나목의 검사준비를 생략한다.

나. 제43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할 때에 제50조의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별표 8 정기검사준비사항 중 제1호파목과 하목의 압력시험의 검사준비를 면제한다.

다. 제43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있어서 총톤수 1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 어선소유자부터 입거, 상가 또는 거선시기의 연기신청이 있고 선체 내부상태 및 주기관·축계·보조기관 등의 작동상태를 검사한 결과 양호한 경우 별표 8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자목부터 카목(선체외부로 한정한다)까지, 제2호나목, 제3호나목 및 다목의 검사준비를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다.

라.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 선체 내부상태 및 주기관·축계·보조기관 등의 작동상태를 검사한 결과 양호한 경우 별표 9 중간검사준비사항 중 제1호가목(별표 8 제1호거목은 제외한다), 나목 1) 및 2), 다목(별표 8 제3호라목 및 마목은 제외한다) 및 라목의 검사준비를 생략할 수 있다.

마. 전회의 개방검사 시 크랭크축 등을 자분탐상시험 또는 초음파탐상시험에 따른 방법으로 비파괴검사를 실시한 주기관(동력전달 장치를 포함한다) 또는 보조기관은 정비 및 작동상태를 검사한 결과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별표 8 정기검사 준비사항 중 제2호가목 또는 별표 9 제1종 중간검사 준비사항 중 제1호나목1)의 개방검사의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개방검사 준비의 면제는 개방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6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기관을 들어내어 전부 개방하지 아니하고는 크랭크축 등의 검사를 시행하기 곤란한 특수한 구조(고속기관 등)의 주기관(동력전달 장치를 포함한다) 또는 보조기관에 대하여는 정비 및 작동상태의 검사와 운전시간 등을 고려한 결과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개방검사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개방검사 준비의 면제는 별표 8 정기검사준비사항에 따라 개방검사를 받은 날부터 다음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총톤수 10톤 미만 어선: 10년(다만, 「남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남시어선을 제외한 총톤수 10톤 미만 어선 중 기관 개방검사를 받은 날부터 10년이 되는 시점과 15년이 되는 시점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개방정밀검사방법에 따라 기관의 상태가 양호함이 입증된 경우에는 기관 개방검사를 받은 날부터 최대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에 대한 개방검사의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2) 총톤수 10톤 이상 어선: 8년

사. 검사에 불합격 처리된 어선을 6개월 이내에 재검사 신청한 경우 지난 번 검사(불합격 처리된 검사를 말한다) 시 합격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검사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아.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용품이 형식승인 대상품목으로서 검사신청 이전 최근 2년 동안 매년 2회 이상 형식승인시험기관의 환경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어선용품에 대한 환경시험의 준비를 면제한다.

자. 어선용품(법 제3조제8호·제9호 및 제11호를 제외한다) 예비검사를 할 때에 외국정부의 검사 등을 받은 것 또는 ISO9000시리즈의 인증을 받은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부품은 재료시험 및 그 부품에 대한 검사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차. 개조, 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예비검사를 할 때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용품 및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개방검사, 비파괴검사 및 효력시험 외의 검사준비를 면제한다.

1) 다른 어선 또는 선박에 사용되었던 어선용품 및 선박용물건

2) 어선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던 것을 어선용으로 구조변경하여 어선에 설치하려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용품

가) 주기관을 제외한 것으로서 출력 220킬로와트(300PS) 미만인 내연기관

나) 연근해 어선에 설치하려는 것

카. 별표 8 정기검사 준비사항중 제2호가목·라목, 별표 9 제1종 중간검사 준비사항 중 제1호나목1)·4) 및 차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남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남시어선업을 겸용하는 어선은 제외한다)의 기관(동력전달장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연안(도서를 포함한다)으로부터 5마일 이내에서 어장관리 또는 구획어업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효력시험 외의 검사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

2) 「수산업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어장관리선으로 승인받은 어선

3)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타. 선내외기(신품으로 한정한다) 및 선외기의 예비검사를 할 때에 동력전달장치 및 축계장치는 해당 기관의 단일조립 완성품으로 간주하며, 외국정부의 검사를 받은 것 또는 ISO 9000시리즈의 인증 받은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것에 대하여는 효력시험외의 검사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파. 선외기를 설치한 어선의 경우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낚시어선으로 그 어선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선외기에 대하여 별표 8 제2호가목·나목에 따른 정기검사 준비사항 및 별표 9 제1호나목1)·2)에 따른 중간검사 준비사항을 면제할 수 있다.

하. 총톤수 10톤 미만 어선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낚시어선으로 그 어선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기관에 대한 개방검사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관의 실린더커버를 떼어내어 확인할 수 있다.

- 1) 어선 소유자가 어선의 주기관 또는 보조기관을 별표 8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준비사항과 같은 수준으로 개방하여 수리·정비를 할 것
- 2) 기관에 대한 수리·정비 후 6개월 이내에 어선검사를 신청할 것
- 3) 기관에 대한 수리·정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
- 4) 해당 기관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정비사업자 등 인정 가능한 자가 수리·정비를 할 것

거. 총톤수 5톤 미만의 선외기 설치 어선의 경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낚시어선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별표 8 정기검사 준비사항 중 제1호가목, 다목, 라목, 카목(선체 외부에 한정한다), 제2호가목,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검사준비를 생략할 수 있다.

너. 별표 8 정기검사 준비사항 중 제1호나목 및 별표 9 중간검사 준비사항 중 제1호가목(별표 8 제1호나목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타베어링부의 각 베어링에 대한 마모한도가 다음에서 정하는 값 이내의 경우에는 타를 들어올리거나 빼내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프로펠러축을 발출(拔出)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핀틀의 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3밀리미터
- 2) 핀틀의 지름이 50밀리미터 초과 10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 5밀리미터
- 3) 핀틀의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0.01D에 4밀리미터를 합한 값("D"는 타두재 지름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 4) 넥베어링: 0.01D에 2밀리미터를 합한 값

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8 제11호의2에 따른 복원성시험에 관한 준비를 생략할 수 있다.

- 1) 같은 조선소(조선소 명칭 및 건조 장소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같은 내용(배의 길이, 너비, 깊이 및 총톤수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승인된 도면에 따라 건조되는 같은 형태의 후속 어선들에 대하여 경하중량 및 길이 방향의 무게중심위치(LCG) 산정을 위한 시험을 한 결과 선행 호선과의 경하중량 또는 LCG의 차이가 다음 조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 | |
|---------------------------------------|------------|--|
| 경하중량(LWT) 차이 | | 길이 방향의 무게중심 위치 (LCG) 차이 |
| 배의 길이(Lf) 50미터 이하 | 2.0퍼센트 LWT | |
| 배의 길이(Lf) 160미터 이상 | 1.0퍼센트 LWT | 0.5퍼센트 수선간장 (LBP, Length Between Perpendiculars) |
| 배의 길이가 50미터 초과 160미터 미만인 경우 보간법에 따른다. | | |

2) 어선의 주요 치수의 변경 없이 어선용품의 증설·탑재·철거 등으로 경하중량 및 중심의 위치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를 하는 경우에는 경하중량 및 무게중심위치(LCG 및 VCG)의 변화를 정확하게 계산한 경하중량산정표에서 경하중량의 증·감량이 기존 경하중량의 2.0퍼센트 또는 2톤 중 큰 값 미만이거나, LCG의 차이가 1.0퍼센트 LBP 미만인 경우

3) 제등록, 용도변경, 도입·차용하거나 대행검사기관을 변경하는 어선으로서 복원성 승인 후 복원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가 없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출서류의 일부를 조정 또는 면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어선검사신청 시 제출하는 어선검사증서는 어선이 항행 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검사 착수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나. 이미 승인받은 도면(건조 당시의 시설기준에 변경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동일업체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어선용품(그 부품을 포함한다)을 제조하려는 경우 또는 한국산업규격(이하 "KS규격"이라 한다)에 따라 어선용품을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제조사양서 및 별표 6 제4호 서류제출을 면제한다. 이 경우 예비검사신청서 비고란에 승인받은 도면의 내역 또는 KS규격번호를 기재토록 한다.

다. 어선용품의 수리(기존 설비 중 그 부품을 신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정비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용품에 대하여는 제조사양서 및 별표 6 제4호 서류제출을 면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카탈로그 등 참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16의2] <신설 2018. 5. 1.>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시험기관에 대한 처분 기준(제59조의4제1항 및 제59조의7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효력정지 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효력정지의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가. 형식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 법 제24조의2 제1항제1호 | 형식승인 취소 | | |
|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24조의2 제1항제2호 | 형식승인 취소 | | |
| 3) 제조 또는 수입한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이 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4조의2 제1항제3호 | 형식승인 취소 | | |
|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4조의2 제1항제4호 | 효력정지 1개월 | 효력정지 3개월 | 효력정지 6개월 |
| 5)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안전법」 제75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4조의2 제1항제5호 | 효력정지 1개월 | 효력정지 3개월 | 효력정지 6개월 |

나.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처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24조의3 제2항제1호 | 지정 취소 | | |
| 2) 형식승인시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24조의3 제2항제2호 | 지정 취소 | | |
| 3)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24조의3 제2항제3호 | 지정 취소 | | |
| 4) 형식승인시험의 오차·실수·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 제24조의3 제2항제4호 | 효력 정지
6개월 | | |
| 5)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시험의 실시를 거부한 경우 | 법 제24조의3 제2항제5호 | 효력 정지
1개월 | 효력 정지
2개월 | 효력 정지
3개월 |
| 6)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 | 법 제24조의3 제2항제6호 | 효력 정지
1개월 | 효력 정지
3개월 | 효력 정지
6개월 |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17] <개정 2021. 6. 30.>

지정사업장의 지정기준 등(제60조 관련)

1. 지정사업장 지정대상물건

가. 지정건조사업장의 경우

- 1) 소형 강화플라스틱제 어선의 선체(측정 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어선의 선체에 한정한다)
- 2) 소형 알루미늄합금제 어선의 선체(측정 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어선의 선체에 한정한다)

나. 지정제조사업장의 경우

- 1) 창구복포(覆布)
- 2) 내연기관(연속최대출력 600마력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 3) 팽창식 구멍뗃목
- 4) 구멍부환
- 5) 구멍조끼
- 6) 구멍줄발사기(발사체 및 구멍줄을 포함한다)
- 7) 로켓낙하산신호
- 8) 신호홍염
- 9) 발연부신호
- 10) 자기발연신호
- 11) 자기점화등
- 12) 고압가스용기의 밸브
- 13) 소화펌프
- 14) 소화기
- 15) 소화제
- 16) 소화호스, 노즐 및 국제육상시설연결구
- 17) 탄산가스용기
- 18) 매니폴드
- 19) 제어밸브
- 20) 선등 또는 그 부품(전구·유리)
- 21) 음향신호장치(기적·호중 및 징 등)
- 22) 국제협약 또는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3조에 따라 어선의 설비기준으로 정하는 설비나 그 부품

다. 지정정비사업장의 경우

- 1) 내연기관(연속최대출력 600마력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 2) 팽창식 구멍뗃목

- 3) 팽창식 구명부기
- 4) 강하식 탑승장치
- 5) 소화기

라. 국제협약 또는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3조에 따라 어선의 설비기준으로 정하는 설비나 그 부품

2. 지정건조사업장의 지정기준

가. 다음의 시설을 갖추는 것

- 1) 어선의 건조 또는 자체검사에 필요한 작업장
- 2) 건조에 필요한 재료, 부품의 보관시설 및 건조된 어선을 보관하기 위한 건조 전후의 일시보관 장소

나. 다음의 건조설비를 갖추는 것

1) 소형어선의 선체

가) 강화플라스틱제 선체

- (1) 현도(賢圖) 작업 설비
- (2) 형틀(Mould) 건조설비
- (3) 수지를 배합하기 위한 다음의 설비
 - (가) 조합대(調合臺)
 - (나) 교반기(攪拌機: 휘저어 섞는 장치)
 - (다) 계량(計量)기구
 - (라) 냉장설비 등
- (4) 유리섬유를 차단하기 위한 설비
- (5) 적층(積層) 작업에 필요한 설비
- (6) 강화플라스틱제의 가공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가) 절단기
 - (나) 절삭기
 - (다) 샌딩기 등
- (7) 그 밖에 강화플라스틱제 선체의 건조 설비

나) 알루미늄합금제 선체

- (1) 현도작업 설비
- (2) 알루미늄합금의 판재 및 관의 가공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가) 표면처리에 필요한 설비
 - (나) 기계톱 그 밖에 절단기계
 - (다) 곡면 가공 기계
 - (라) 선반 그 밖에 공작기계

(마) 조립 및 진수설비

- 용접기
- 용접용 재료의 건조(乾燥)설비
- 리벳(둥근 버섯모양의 굵은 못) 이음 설비
- 치구(治具) 그 밖에 조립에 필요한 보조기계 등
- 진수대 그 밖에 진수작업에 필요한 설비

(3) 그 밖에 알루미늄합금제 선체 건조설비

다. 다음의 시험 및 자체검사설비를 갖추는 것

1) 소형어선의 선체

가) 강화플라스틱제 선체

(1) 재료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가) 만능시험기, 충격시험기 및 경도계 그 밖에 기계적 시험에 필요한 설비

(나) 유리함유율 등의 측정에 필요한 설비

(2) 비파괴검사에 필요한 설비

(3) 선체강도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가) 낙하시험에 필요한 설비

(나) 변형측정장치

(4) 그 밖에 강화플라스틱제선체의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설비

나) 알루미늄합금제 선체

(1) 재료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가) 만능시험기, 충격시험기 및 경도계 그 밖에 기계적 시험에 필요한 설비

(나) 금속조직의 검사에 필요한 설비

(다) 정량분석장치

(2) 비파괴검사에 필요한 설비

(3) 용접검사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가) 표면 온도계

(나) 용접용 전류계

(다) 수분 측정장치

(4) 그 밖에 알루미늄합금제 선체의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설비

라. 다음의 인원을 갖추는 것

1) 자체검사자 1명 이상

2) 자체검사 업무의 감독을 위한 관리책임자로서 다음의 자격이 있는 자 1명 이상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나)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3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고 해당 분야의 제조경력 또는 승선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다) 해당 분야의 건조경력 또는 자체검사경력이 5년 이상(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인 자로서 자체검사의 책임자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라)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또는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서의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3) 건조에 종사하는 인력

- 마. 건조 작업을 담당하는 조직으로부터 독립된 자체검사 조직을 갖출 것
- 바. 자체검사설비의 교정검사에 관한 기준을 정한 규정이 있을 것
- 사. 다음의 법령 및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규정이 있을 것
 - 1) 어선의 건조 및 자체검사에 필요한 도면 및 관련 법령(국제협약을 포함한다)
 - 2) 건조작업 및 자체검사에 관한 기록
 - 3) 건조설비의 관리에 관한 기록(일상점검, 정기점검, 보수·유지의 방법, 계량관리 및 관리조직을 포함한다)
 - 4) 배상청구 처리 및 제품의 품질보증
- 아. 어선의 설계 및 건조공정, 재료 및 부품, 자체검사 및 외주 등에 관한 관리기준이 있을 것
- 자. 지정건조사업장으로 인정받으려는 어선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 계속하여 1년 이상 검정을 받은 실적이 있을 것. 다만, 같은 품목으로서 형식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정제조사업장의 지정기준

- 가. 다음의 시설을 갖출 것
 - 1) 어선용품의 제조 또는 자체검사에 필요한 작업장
 - 2) 제조에 필요한 재료·부품의 보관시설 및 제조된 어선용품을 보관하기 위한 가공 전후의 일시보관 장소
- 나. 다음의 제조설비를 갖출 것
 - 1) 창구복포
 - 가) 제작준비에 필요한 설비
 - (1) 합사기(合絲機)
 - (2) 연사기(撚絲機)

- (3) 정경기(整經機) 등
- 나) 직기(織機) 그 밖에 제직(製織) 설비
- 다) 그 밖에 창구복포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 2) 내연기관(연속최대출력 600마력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 가) 주조작업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목재의 건조설비
 - (2) 목공기계
 - (3) 주물모래 처리장치
 - (4) 조형(造型) 기계
 - (5) 주형(鑄型) 건조로
 - (6) 용선로(鎔銑爐) 그 밖에 용해로 등
- 나) 가열작업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단조용(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형체를 만드는 용도) 가열로
 - (2) 열처리로
 - (3) 침탄로(浸炭爐) 또는 질화로(窒化爐)
 - (4) 열박음에 필요한 설비 등
- 다) 소성가공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단조기계(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형체를 만드는 기계)
 - (2) 프레스머신
 - (3) 벤딩머신 등
- 라) 절삭작업 및 용접작업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자동가스절단기
 - (2) 자동용접기 및 수동 아크용접기(방전 시 발생하는 불꽃을 이용한 용접기)
- 마) 절삭가공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평삭반(平削盤) 및 밀링머신
 - (2) 형삭반(形削盤)
 - (3) 선반(旋盤)
 - (4) 드릴링머신
 - (5) 브로칭머신(Broaching machine)
 - (6) 호빙머신(Hobbing machine)
 - (7) 연삭반(研削盤) 등
- 바) 세정작업 설비
- 사) 그 밖에 내연기관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 3) 팽창식 구멍뿔목

가) 고무 콤파운드(compound)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고무절단기
- (2) 고무혼합설비
- (3) 예열용오븐
- (4) 스트레이너(Strainer) 등

나) 고무풀 제조 설비

다) 포지에 고무를 입히는데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고무풀을 바르는 장치
- (2) 캘린더롤러(Calendar roller)

라) 가황(加黃) 작업에 필요한 설비

마) 특수부분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금속부품 연마장치
- (2) 금속부품 세정장치
- (3) 금속부품 건조장치
- (4) 접착제를 바르는 장치
- (5) 고온 프레스

바) 별표 4 제1호의 시설

사) 그 밖에 팽창식 구멍뗃목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4) 구멍부환 및 구멍조끼

가) 재봉설비

나) 부력재 가공설비

다) 팽창식 구멍조끼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팽창식 구멍뗃목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구멍줄발사기, 로켓낙하산신호, 신호홍염, 발연부신호, 자기발연신호 및 자기점화 등

가) 화약의 배합작업에 필요한 설비

나) 화약의 성형(成型) 작업 또는 충전(充填) 작업에 필요한 설비

다) 그 밖에 구멍줄발사기, 로켓낙하산신호, 신호홍염, 발연부신호, 자기발연신호 또는 자기점화 등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6) 고압가스용기의 밸브

가) 부품을 가공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초음파세척기
- (2) 선반
- (3) 드릴링머신
- (4) 연마기(研磨機)

(5) 컴프레서

나) 그 밖에 고압가스용기의 밸브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7) 소화펌프

가) 구조작업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목공기계
- (2) 주물모래 처리장치
- (3) 주형(鑄型) 건조로
- (4) 용선로(鑄鉄爐) 그 밖에 용해로

나) 절삭가공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평삭반(平削盤)
- (2) 형삭반(形削盤)
- (3) 선반
- (4) 밀링머신
- (5) 드릴링머신
- (6) 연삭반
- (7) 호빙머신

다) 세정작업에 필요한 설비

라) 그 밖에 소화펌프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8) 소화기

가) 소화기의 몸체를 조립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롤러머신
- (2) 자동용접기 및 수동아크용접기

나) 소화기의 부품을 가공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평삭반
- (2) 형삭반
- (3) 밀링머신
- (4) 드릴링머신
- (5) 호빙머신
- (6) 쇄톱기계
- (7) 프레스머신
- (8) 호스프레스머신
- (9) 공기압축기

다) 그 밖에 소화기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9) 소화제

가) 표준(標準)제

- 나) 파쇄기
- 다) 믹싱설비
- 라) 제조설비
- 마) 그 밖에 소화제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 10) 소화호스, 노즐 및 국제육상시설연결구
 - 가) 부품을 가공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선반
 - (2) 드릴링머신
 - (3) 소화호스와 연결구의 압착설비 등
 - 나) 그 밖에 소화호스, 노즐 및 국제육상시설연결구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 11) 탄산가스용기
 - 가) 성형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쇠톱기계
 - (2) 고주파가열로
 - (3) 저부 및 두부성형기
 - (4) 네크절단기
 - (5) 저부압착용 프레스
 - 나) 열처리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노멀라이징 설비
 - (2) 퀴칭 설비
 - (3) 템퍼링설비
 - 다) 나사를 가공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선반
 - (2) 드릴링머신
 - (3) 리밍머신
 - (4) 탭핑머신
 - 마) 표면처리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자동각인기계 및 레이저각인기계
 - (2) 내부쇼트머신
 - (3) 외부쇼트머신
 - (4) 분체도장설비
 - 바) 그 밖에 탄산가스용기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 12) 매니폴드
 - 가) 절단작업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산소절단기
- (2) 절단기
- (3) 선반
- (4) 드릴링머신

나) 용접작업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수동아크용접기
- (2) 탄산가스용접기
- (3) 티그(TIG)용접기
- (4) 용접용롤러

다) 조립작업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체크밸브 조립기계
- (2) 탭핑머신

라) 그 밖에 매니폴드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13) 제어밸브

가) 가공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선반
- (2) 드릴링머신
- (3) 밀링머신
- (4) 그라인더(연마기)

나) 그 밖에 제어밸브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14) 선동 또는 그 부품(전구, 유리)

가) 소성가공에 필요한 설비

나) 절단작업에 필요한 설비

다) 그 밖에 선동 또는 그 부품(전구, 유리)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15) 음향신호장치(기적, 호중, 징 등)

가) 주조작업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주형건조로
- (2) 용해로
- (3) 주물모래처리장치

나) 절삭가공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선반
- (2) 드릴링머신

다) 세정작업에 필요한 설비

라) 그 밖에 음향신호장치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16) 자장식 호흡구, 비상탈출용 호흡구

가) 세척설비

- (1) 진공건조기
- (2) 초음파세척기

나) 절삭 및 가공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선반
- (2) 탭핑머신
- (3) 밀링머신
- (4) 그라인더
- (5) 드릴링머신
- (6) 공기압축기
- (7) 자외선 코팅기
- (8) 봉재틀
- (9) 에어프레스
- (10) 스웨이징(압축가공) 머신
- (11) 인쇄기

다) 그 밖에 자장식 호흡구 및 비상탈출용 호흡구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다. 다음의 시험 및 자체검사설비를 갖출 것

1) 창구복포

가) 연사의 연수검사에 필요한 설비

나) 포지의 외관검사에 필요한 설비

다) 포지의 물성검사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인장시험기
- (2) 질량측정기
- (3) 항온항습조

라) 그 밖에 창구복포의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설비

2) 내연기관(연속최대출력 600마력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가) 재료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만능시험기, 충격시험기 그 밖에 기계적 시험에 필요한 설비
- (2) 금속조직의 검사에 필요한 설비
- (3) 정량분석장치
- (4) 주물모래의 시험에 필요한 설비

나) 비파괴검사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X-선 검사설비
- (2) 자기탐상장치
- (3) 초음파탐상장치

(4) 침투탐상장치

가) 압력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1) 수압시험에 필요한 설비

(2) 유압시험에 필요한 설비

다) 육상시운전을 위한 동력계, 진동계 그 밖에 측정에 필요한 설비

라) 그 밖에 내연기관의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설비

3) 팽창식 구멍뿔목

가) 재료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1) 점도계, 고무경도계, 인장시험기, 내한성시험기 및 열노화시험기 그 밖에 고무콤파운드의 검사에 필요한 설비

(2) 포지의 검사에 필요한 설비

(3) 박리시험기 그 밖에 고무풀의 검사에 필요한 설비

나) 고무포의 검사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1) 기밀시험기

(2) 내유시험기

(3) 수압시험기

(4) 열노화시험기

(5) 내후성시험기

(6) 내한성시험기

다) 부품 및 부속품류의 검사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1) 인장시험기

(2) 소금물 분무시험기

(3) 실린더 봉판의 기밀시험장치

라) 누출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1) 충기장치

(2) 압력계

(3) 기압계 및 온도계

마) 높이 18미터 이상의 투하팽창시험설비

바) 그 밖에 팽창식 구멍뿔목의 검사에 필요한 설비

4) 구멍부환 및 구멍조끼

가) 재료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1) 인장시험기

(2) 수조

나) 성능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1) 내화시험기

- (2) 낙하시험수조
- (3) 부력시험수조
- 다) 저울
- 라) 그 밖에 구명부환 또는 구명조끼의 시험 및 검사 설비
- 5) 구명출발사기, 로켓낙하산신호, 신호홍염, 발연부신호, 자기발연신호 및 자기점화등
 - 가) 재료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정량분석장치
 - (2) 정성분석장치
 - 나) 효력시험 설비
 - 다) 내식시험 설비
 - 마) 그 밖에 구명출발사기, 로켓낙하산신호, 신호홍염, 발연부신호, 자기발연신호 또는 자기점화등의 시험 및 검사 설비
- 6) 고압가스용기의 밸브
 - 가) 내압시험 설비
 - 나) 기밀시험 설비
 - 다) 안전장치(동판 등)의 작동시험 설비
 - 라) 그 밖에 고압가스용기의 밸브 검사설비
- 7) 소화기
 - 가) 수압시험 설비
 - 나) 효력시험 설비
 - 다) 그 밖에 소화기의 검사설비
- 8) 소화제
 - 가) 질량측정설비
 - 나) 항온수조
 - 다) 온도계, 습도계
 - 라) 내압시험기, 비중계
 - 마) 그 밖에 소화제의 검사 설비
- 9) 소화호스, 노즐 및 국제육상시설연결구
 - 가) 내압시험 설비
 - 나) 그 밖에 소화호스, 노즐, 국제육상시설연결구의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설비
- 10) 탄산가스용기
 - 가) 재료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만능시험기, 충격시험기 및 경도계 그 밖에 기계적 시험 설비

- (2) 두께측정 설비
- 나) 내압시험 설비
- 다) 효력시험 설비
- 라) 그 밖에 탄산가스용기의 시험 및 검사 설비
- 11) 매니폴드
 - 가) 내압시험 설비
 - 나) 효력시험 설비
 - 다) 그 밖에 매니폴드의 시험 및 검사 설비
- 12) 제어밸브
 - 가) 내압시험 설비
 - 나) 기밀시험 설비
 - 다) 효력시험 설비
 - 라) 그 밖에 제어밸브의 시험 및 검사 설비
- 13) 소화펌프
 - 가) 재료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금속조직의 검사 설비
 - (2) 정량분석장치
 - (3) 주물모래 시험 설비
 - 나) 수압시험 설비
 - 다) 성능시험 설비
 - 라) 그 밖에 소화펌프의 시험 및 검사 설비
- 14) 선동 또는 그 부품(전구, 유리)
 - 가) 재료시험 설비
 - 나) 내식시험 설비
 - 다) 완성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광도측정장치
 - (2) 배광측정장치
 - (3) 방수시험장치
 - (4) 진동시험장치
 - (5) 절연저항시험장치
 - 라) 그 밖에 선동 또는 그 부품의 시험 및 검사 설비
- 15) 음향신호장치(기적, 호종, 징 등)
 - 가) 재료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만능시험기 그 밖에 기계적 시험 설비
 - (2) 주물모래 시험 설비

나) 성능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무향실
- (2) 음압레벨측정계
- (3) 3분의 1 옥타브 필터
- (4) 튜너 밴드패스 필터
- (5) 음압레벨기록기
- (6) 보정계

다) 그 밖에 음향신호장치의 시험 및 검사 설비

16) 자장식 호흡구, 비상탈출용 호흡구

가) 재료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인장시험기
- (2) 얼굴 부위 충격시험기(자장식 호흡구에 한정함)

나) 수압시험기

다) 성능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공기압시험기
- (2) 가용합금 파열온도 측정기
- (3) 얼굴 부위 기밀시험기
- (4) 배기밸브 기밀시험기
- (5) 배기밸브 저항시험기(자장식 호흡구에 한정함)
- (6) 소음측정기(자장식 호흡구에 한정함)
- (7) 나사링게이지
- (8) 나사플러그게이지
- (9) 유량측정기
- (10) 내열시험기
- (11) 내한시험기
- (12) 투영기(자장식 호흡구에 한정함)
- (13) 경보(회של) 측정기(자장식 호흡구에 한정함)
- (14) By-pass 측정기(자장식 호흡구에 한정함)

라) 그 밖에 시험 및 검사 설비

라. 다음의 인원을 갖추는 것

- 1) 어선용품의 자체검사자 1명 이상
- 2) 자체검사 업무의 감독을 위한 관리책임자로서 다음의 자격이 있는 자 1명 이상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3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고 해당 분야의 제조경력 또는 승선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다) 해당 분야의 제조경력 또는 자체검사경력이 5년 이상(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인 자로서 자체검사의 책임자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라)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또는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서의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3) 제조에 종사하는 인력

마. 제조작업을 담당하는 조직으로부터 독립된 자체검사 조직을 갖출 것

바. 자체검사설비의 교정검사에 관한 기준을 정한 규정이 있을 것

사. 다음의 법령 및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규정이 있을 것

1) 어선용품의 제조 및 자체검사에 필요한 도면 및 관련 법령(국제협약을 포함한다)

2) 제조작업 및 자체검사에 관한 기록

3) 제조설비의 관리에 관한 기록(일상점검, 정기점검, 보수·유지의 방법, 계량관리 및 관리조직을 포함한다)

4) 배상청구 처리 및 제품의 품질보증

아. 어선용품의 설계 및 제조공정, 재료 및 부품, 자체검사 및 외주 등에 관한 관리기준이 있을 것

자. 다음의 사항을 갖출 것(팽창식 구명설비를 제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제조에 필요한 적정수준의 재료 및 교환부품의 확보

2) 사용설명서 및 정비방법과 그 변경사항에 관한 기준의 비치

3) 정비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 제도의 설정

차. 지정제조사업장으로 인정받으려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 계속하여 1년 이상 검정을 받은 실적이 있을 것. 다만, 같은 품목으로서 형식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정정비사업장의 지정기준

가. 다음의 시설을 갖출 것. 다만, 구명뗏목의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의 시설로 한다.

1) 어선용품의 정비 또는 자체검사에 필요한 작업장

2) 정비에 필요한 재료·부품 및 정비된 어선용품을 보관하기 위한 장소

나. 다음의 정비설비를 갖출 것

1) 내연기관(연속최대출력 600마력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가) 절삭가공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선반
- (2) 드릴링머신
- (3) 밸브 및 밸브시트의 가공기구
- 나) 삭제 <2011.3.30>
- 다) 세정작업에 필요한 설비
- 라) 그 밖에 내연기관의 정비에 필요한 설비
- 2) 팽창식 구멍뗃목
 - 가) 별표 4 제3호의 기구 및 비품류
 - 나) 그 밖에 팽창식 구멍뗃목의 정비에 필요한 설비
- 3) 팽창식 구멍부기, 강하식 탑승장치
 - 가) 점검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솔 그 밖에 세정기구
 - (2) 실린더 분리용 공구
 - (3) 충기장치 분해용 공구
 - (4) 휴대용등 또는 회중전등
 - 나) 보수 또는 수리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접시저울, 롤러 그 밖에 접착가공에 필요한 공구
 - (2) 공업용 재봉틀 그 밖에 봉제용구
 - (3) 로프 가공용구 및 납땜가공용구
 - 다) 그 밖에 팽창식 구멍부기 또는 강하식 탑승장치의 정비에 필요한 설비
- 4) 소화기
 - 가) 소화기실린더 세정 설비
 - 나) 소화기실린더 압력시험 설비
 - 다) 각종 소화약제를 저장하는 설비
 - 라) 봉판 그 밖에 소화기정비에 필요한 부품저장 및 소화시험설비
 - 마) 그 밖에 소화기의 정비에 필요한 설비
- 다. 다음의 시험 및 자체검사설비를 갖추는 것
 - 1) 내연기관(연속최대출력 600마력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 가) 비파괴검사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다만, (1) 및 (2)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탐상 및 초음파탐상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그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 (1) 자기탐상설비
 - (2) 초음파탐상설비
 - (3) 침투탐상설비

나) 압력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수압시험 설비
- (2) 유압시험 설비

다) 육상시운전 설비

라) 그 밖에 내연기관의 정비사항을 시험 및 검사 설비

2) 팽창식 구멍땀목, 팽창식 구멍부기 및 강하식 탑승장치

가) 별표 4 제3호다목의 검사를 위한 기구

나) 그 밖에 팽창식 구멍땀목·팽창식 구멍부기 또는 강하식 탑승장치의 정비사항을 시험 및 검사 설비

3) 소화기

가) 충전 또는 잔량 측정 설비

나) 포소화제(기계포에 한정한다) 농도 측정 설비

다) 그 밖에 소화기의 정비 시험 및 검사 설비

라. 다음의 인원을 갖추는 것

1) 어선용품의 자체검사자 1명 이상

2) 자체검사 업무의 감독을 위한 관리책임자로서 다음의 자격이 있는 자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3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고 해당 분야의 제조·정비 또는 승선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다) 해당 분야의 제조·정비 또는 자체검사 경력이 5년 이상(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인 자

라)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또는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서의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3) 다음 요건에 적합한 정비 인력(팽창식 구멍설비를 정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팽창식 구멍설비의 제조사업장 또는 정비사업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제조자가 시행하는 팽창식 구멍설비의 정비에 관한 교육, 훈련을 받은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비기술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정비기술자 2명 이상

나) 정비기술자의 지도를 받아 정비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원 2명 이상

마. 삭제 <2011.3.30>

바. 자체검사 설비의 교정검사에 관한 기준을 정한 규정이 있을 것

사. 다음의 법령 및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규정이 있을 것

1) 어선용품의 정비 및 자체검사에 필요한 도면 및 관련 법령(국제협약을

포함한다)

2) 정비작업 및 자체검사에 관한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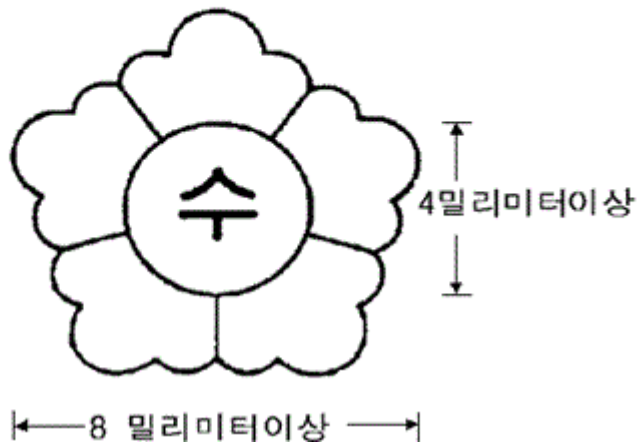
3) 정비설비의 관리에 관한 기록(일상점검, 정기점검, 보수, 유지의 방법, 계량관리 및 관리조직을 포함한다)

4) 배상청구 처리에 관한 기준

아. 어선용품의 설계 및 정비공정, 재료 및 부품, 자체검사 및 외주 등에 관한 관리기준이 있을 것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18] <개정 2018. 5. 1.>

자체검사 합격표시(제60조의4제4항 관련)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18의2] <개정 2023. 4. 25.>

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제60조의5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효력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효력정지의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이 효력정지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마목 전단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26조 제1항제1호 | 지정 취소 | | |
| 나. 건조·제조하거나 정비한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이 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6조 제1항제2호 | 지정 취소 | | |
| 다.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26조 제1항제3호 | 효력 정지
1개월 | 효력 정지
3개월 | 효력 정지
6개월 |

| | | | | |
|---|---------------|-----------------|-----------------|-----------------|
|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을 판매한 경우 | 법 제26조 제1항제4호 | 효력
정지
1개월 | 효력
정지
3개월 | 효력
정지
6개월 |
| 마.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을 건조·제조하거나 정비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6조 제1항제5호 | 효력
정지
1개월 | 효력
정지
2개월 | 효력
정지
3개월 |
| 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 | 법 제26조 제1항제6호 | 효력
정지
1개월 | 효력
정지
3개월 | 효력
정지
6개월 |
| 사.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안전법」 제75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 법 제26조 제1항제7호 | 효력
정지
1개월 | 효력
정지
3개월 | 효력
정지
6개월 |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19] <개정 2021. 6. 30.>

하역설비에 대한 제한하중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 (제61조제2항 관련)

1. 하역장치의 구조 및 강도 계산

가. 제한각도 및 제한반지름 등

- 1) 하역장치 중 데릭장치(데릭포스트, 스테이, 붐, 링플레이트, 아이플레이트, 클리트 등의 부착품과 윈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하중시험을 하는 때의 데릭붐의 수평면에 대한 각도를 제한각도로 하고, 지브크레인은 하중시험을 한 때의 최대선회반경을 제한반경으로 하며, 그 밖의 하역장치는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제한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을 부하하는 경우 그 중요 부분의 파괴강도에 대한 안전계수가 다음 표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 구 분 | | 안전계수 |
|-----------|-----------------|------|
| 금속구조부 | 제한하중이 10톤 이하인 것 | 5 |
| | 제한하중이 10톤 초과인 것 | 4 |
| 목 구조부 | | 8 |
| 와 이 어 로 프 | | 5 |

나. 하역장치의 구조 및 강도계산

- 1) 이 규정은 강제데릭장치로서 하역방법, 구조 및 배치가 통상적인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 2) 마스트 및 데릭포스트(이하 "포스트" 라 한다)의 최상층 지지갑판 부분(이하 "기부" 라 한다)의 바깥지름(d)은 다음 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포스트의 단면이 원형이 아닌 경우에는 최소바깥지름 또는 변을 d로 본다.

$$d = 5h \text{ (센티미터)}$$

이 식에서

h는 기부부터 토퍼브래킷까지의 포스트의 높이(미터)

3) 포스트기부의 단면계수

가) 스테이가 없는 포스트

- (1) 단면계수(Z)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값 이상일 것

$$Z = C_1 \cdot C_2 \cdot W \cdot O \text{ (세제곱센티미터)}$$

이 식에서

C_1 , C_2 는 다음 표에 따른 값. 이 경우 W가 같은 표에 따른 값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보간법에 따른다.

| W
(톤) | 2 이하 | 3 | 4 | 5 | 6 | 7 | 8 | 9 | 10 | 15 이상 |
|----------|------|------|------|------|------|------|------|------|------|-------|
| C_1 | 1.35 | 1.25 | 1.20 | 1.17 | 1.15 | 1.14 | 1.13 | 1.12 | 1.10 | 1.10 |
| C_2 | 125 | 120 | 117 | 115 | 114 | 113 | 112 | 111 | 110 | 89 |

W는 제한하중 (톤)

O는 데릭붐의 수평면에 대한 각도를 제한각도로 하는 경우의 선회반지

름(미터)

- (2) 포스트의 선수측 및 선미측에 데릭뿔을 설치하는 경우 배의 길이방향의 측에 관한 단면계수(Z)는 (1)에 따른 값 또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값 중 큰 값 이상일 것

$$Z = (\sum C_2 \cdot W) \cdot O' \text{ (세제곱센티미터)}$$

이 식에서

$\sum C_2 \cdot W$ 는 포스트의 선수측 및 선미측 각각의 데릭뿔에 대한 $C_2 \cdot W$ 값의 합

O' 는 포스트의 중심으로부터 선측까지의 거리에 아우트리치를 더한 길이(미터)

C_2 및 W 는 각각 (1)에 따른 C_2 및 W 와 같다.

- (3) 데릭뿔이 포스트외의 다른 독립된 구조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데릭뿔의 단면계수는 (1) 또는 (2)에 따른 값에 다음 산식에 따른 값(α)을 곱한 것 이상일 것. 이 경우 (1)에 따른 계수 C_1 을 1.0으로 할 것

$$\alpha = \frac{h}{h-h'}$$

이 식에서

h' 는 기부부터 구스넥브래킷의 중심까지의 수직거리 (미터)

h 는제2호에 따른 h 와 같다.

나) 스테이가 있는 포스트

9)를 만족하는 스테이(이하 "스테이"라 한다)가 설치된 포스트기부의 단면계수는 가목에 따른 것에 다음 산식에 따른 값(β)을 곱할 수 있다.

$$\beta = 10 \frac{h^3}{d_m^3} \cdot \sum R \text{ (세제곱센티미터)}$$

이 식에서

d_m 는 포스트기부의 바깥지름 또는 변 (센티미터)

h 는 2)에 따른 h 와 같다.

$\sum R$ 은 각 스테이에 대하여 다음 산식에 따른 값을 합한 것

$$\sum R = (ds^2 \cdot a^2) / (\ell_0 \cdot \ell_s^2)$$

이 식에서

ds 는 스테이로 사용되는 와이어로프의 지름 (밀리미터)

ℓ_s 는 스테이의 상하 양단사이의 길이(미터)

ℓ_0 는 ℓ_s 에서 다음 산식에 따른 값(γ)을 감한 길이(미터)

$$\gamma = 0.045d_s + 0.26 \text{ (미터)}$$

a 는 스테이의 상하 양단간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향으로 측정한 수평투영거리(미터)

- (1) 가) (1)에 따른 것에서 감하는 값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데릭뿔의 가동범위의 모든 방향으로 측정한 것 중 $\sum R$ 의 값을 최소로 하는 방향
(2) 가) (2)에 따른 것에서 감하는 값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배의 횡방향

다) 킹포스트

균일한 단면의 포틀을 가진 킹포스트로서 데릭붐이 포스트에 따라 지지되는 경우 기부 단면계수는 다음에 따를 것

- (1) 배의 횡방향의 축에 관한 단면계수는 가) (1)에 따르는 것에 다음 계수를 곱한 것까지 감할 수 있다.

r 이 0.6 이상인 경우 0.7

r 이 0.6 미만인 경우 $1 - 0.5 r$

이 식에서

r 은 포틀단면의 너비와 포스트기부의 배의 길이 방향의 지름과의 비율

- (2) 배의 길이 방향의 축에 관한 단면계수는 가) (1) 또는 (2)에 따르는 것 중 큰 값에 다음의 계수를 곱한 값까지 감할 수 있다.

r' 가 0.3 이상인 경우 0.35

r' 가 0.3 미만인 경우 $0.5 - 5/3 \cdot r'^2$

이 식에서

r' 는 포틀단면의 길이와 포스트기부의 배의 횡방향의 지름과의 비율

- (3) 좌우의 포스트 간격이 포스트 높이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에는 1) 및 2)에 따르는 계수를 적당히 증가시킬 것

라) 사이드포스트

데릭붐을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짧은 데릭포스트의 기부의 단면계수는 다음에 따를 것

- (1) 단면계수 (Z)는 다음 산식에 따르는 값 이상일 것

$$Z = 85 \frac{h'}{h - h'} W \cdot O \quad (\text{세제곱센티미터})$$

이 식에서

W 및 O 는 각각 가) 1)에 따르는 W 및 O 와 같다.

h' 는 3)가) (3)에 따르는 h' 와 같다.

h 는 2)에 따르는 h 와 같다.

- (2) 포스트의 선수측 및 선미측에 데릭붐을 설치하는 경우 배의 길이 방향의 축에 관한 단면계수는 (1)에 따르는 W 및 O 대신에 선수측 및 선미측의 데릭붐에 대한 W 의 합계와 가) (2)에 따르는 O' 를 사용하여 계산한 값 이상일 것

4) 기부를 제외한 부분의 치수

가) 포스트기부의 하방으로부터 구스넥브래킷의 상방 적절한 높이까지의 치수는 가능한한 기부와 동등한 것일 것

나) 가)의 부분으로부터 상방으로는 점차 포스트의 지름 및 두께를 감할 수 있으나 판두께(t)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음 산식에 따르는 값 이상일 것. 또한, 아우트리거 또는 토핑브래킷을 붙이는 부분의 바깥지름은 기부의 바깥지름의 85퍼센트를 표준으로 한다.

$$t = 0.1d_m + 2.5 (\text{밀리미터})$$

이 식에서

d_m 은 포스트의 해당 부분에 있어서의 최소 바깥지름 또는 변(센티미터)

5) 아우트리거

아우트리거는 적절한 구조로 하고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것

6) 포틀

가) 3) (다)에 따른 킹포스트의 균일한 단면의 포틀의 단면계수는 다음에 따른 것

(1) 단면의 수직축에 관한 단면계수는 3)가) (1)에 따른 것에 다음 산식에 따른 계수를 곱한 것 이상일 것. 다만, 계수가 0.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0.2로 한다.

$$0.235 \, r/C + 0.1$$

이 식에서

r 은 3)다) (1)에 따른 r 과 같다.

C 는 포스트 기부단면의 배의 횡방향 축에 대한 실제의 단면계수와 3)

가) (1)에 따른 단면계수와의 비율

(2) (1)에 불구하고 포스트의 선수측이나 선미측의 한쪽에만 데릭뿔을 설치하는 경우 단면의 수직축에 대한 단면계수는 (1)에 따른 것의 2분의 1로 할 수 있다.

(3) 단면의 수평축에 대한 단면계수는 3)가) (1)에 따른 것에 다음 산식에 따른 계수를 곱한 것 이상일 것. 다만, 계수가 0.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0.2로 한다.

$$0.25 \, r'/C'$$

이 식에서

r' 은 3)다) (2)에 따른 r' 과 같다.

C' 는 포스트 기부단면의 배의 길이 방향의 축에 대한 실제의 단면계수와 3)가) (2)에 따른 단면계수와의 비율

나) 포틀은 굽힘에 대하여 단면의 변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히 보강되어 있는 것일 것

7) 포스트의 지지

포스트의 하부는 제한하중에 대하여 선체구조와 유효하게 이를 고착할 것

8) 국부 보강

포스트의 아우트리거 및 포틀 등에 토핑브래킷, 구스넥브래킷 및 기타 쇠붙이를 취부하는 부분은 이중판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보강할 것

9) 스테이

가) 스테이에 사용되는 와이어 로프는 한국산업규격 KS V 3443 "선박용 와이어 로프의 사용기준" 1) 또는 3)에 따른 와이어 로프일 것

나) 스테이에 사용되는 와이어로프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값이 그 와이어로프에 대한 한국산업규격 KS D 3514 "와이어로프" 부표 1 또는 부표 3에 따른 파단하중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18 \frac{d_s^2}{\ell_o \ell_s} a \delta \cdot g \text{ (KN)}$$

이 식에서

d_s , a , ℓ_o 및 ℓ_s 는 각각 3)나)에 따른 d_s , a , ℓ_o 및 ℓ_s 와 같다. 다만, a 는 δ 의 값을 계산하는 경우와 동일방향으로 측정되는 것으로 한다.

δ 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값

$$\delta = C_s \frac{h}{h-h'} \cdot \frac{W \cdot O}{\frac{I}{h^2} + 7.32h \Sigma R}$$

이 식에서

I 는 포스트기부의 단면2차모멘트(네제곱센티미터)

h 는 2)에 따른 h 와 같다.

W , O 및 ΣR 는 각각 3)에 따른 W , O 및 ΣR 와 같다. 다만, ΣR 값의 계산에 있어서 a 는 데릭뿔의 가동 범위의 모든 방향으로 측정되는 것으로 한다.

C_s 는 다음 표에 따른 값. 이 경우 w 가 같은 표에 따른 값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보간법에 따른다.

| W(톤) | 2이하 | 3 | 4 | 5 | 6 | 7 | 8 | 9 | 10 | 15이상 |
|-------|------|------|------|------|------|------|------|------|------|------|
| C_s | 2.64 | 2.52 | 2.46 | 2.41 | 2.38 | 2.35 | 2.33 | 2.31 | 2.29 | 2.22 |

다) 스테이용 쇠붙이는 양질의 것으로서 적절한 치수를 가지는 것일 것

라) 리깅나사와 그 핀 및 체인플레이트 아이는 스테이용 와이어로프에 대하여 적절한 것일 것

10) 데릭뿔

가) 데릭뿔의 지지부는 데릭뿔이 지지부부터 이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일 것

나) 데릭뿔 및 그 쇠붙이는 한국산업규격 KS V 2211 "강판제 데릭뿔"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그 치수 등은 다음에 따른 것

(1) 데릭뿔의 중앙부의 적절한 길이 부분에 대한 단면2차 모멘트(I)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값 이상일 것

$$I = C_B P \ell^2 \text{ (네제곱센티미터)}$$

이 식에서

C_B 는 제한하중이 10톤 이하인 경우에는 2.75, 15톤 이상 50톤 이하인 경우에는 2.20. 이 경우 제한하중이 중간 값인 경우에는 보간법에 따른다.

ℓ 은 데릭뿔의 유효길이(미터)

P 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값

$$P = \left(a_1 \frac{\ell}{h-h'} + f \right) \cdot W \quad (\text{톤})$$

이 식에서

h 는 2)에 따른 h 와 같다.

W 및 h' 는 각각 3)에 따른 W 및 h' 와 같다.

a_1 은 다음 표에 따른 값. 다만, W 가 동표에 따른 값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보간법에 따른다.

| W(톤) | 2 이하 | 3 | 4 | 5 | 6 | 7 | 8 | 9 | 10 | 15이
상
50이
하 |
|-------|------|------|------|------|------|------|------|------|------|----------------------|
| a_1 | 1.28 | 1.23 | 1.20 | 1.18 | 1.16 | 1.15 | 1.14 | 1.13 | 1.13 | 1.10 |

f 는 다음 표에 따른 값. 다만, 하역줄이 데릭몸의 상단부에 고정된 시브를 통하여 포스트의 정부로 유도되는 배치로 되어 있는 것은 0으로 한다.

| 하역줄용 활차의
시브수의 합계 | 1 | 2 | 3 | 4 | 5 | 6 | 7 | 8 |
|---------------------|-------|-------|-------|-------|-------|-------|-------|-------|
| f | 1.102 | 0.570 | 0.392 | 0.304 | 0.251 | 0.216 | 0.192 | 0.172 |

(2) (1)에 불구하고 단면 2차모멘트(I)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값으로 할 수 있다.

$$I = (\pi/8) \cdot (d_o - t)^3 \cdot t \quad (\text{네제곱센티미터})$$

이 식에서

d_o 는 중앙의 바깥지름(센티미터)

t 는 판두께(센티미터)

(3) 데릭몸의 양단부 지름은 중앙부 지름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4) 데릭몸 본체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t)는 다음에 따른 값 또는 중앙부의 바깥지름의 50분의 1 중 큰 값 이상일 것

P 가 7.7 미만인 경우 $t=6$ (밀리미터)

P 가 7.7 이상인 경우 $t=0.13P + 5$ (밀리미터)

이 식에서

P 는 1)에 따른 P 와 같다.

(5) 데릭몸의 상단부쇠불이가 붙는 부분은 적절한 두께의 이중판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보강할 것

(6) 제한하중이 50톤을 초과하는 장치에 사용되는 데릭몸의 치수에 대하여는 다음에 따를 것

(가) 다음 조건식을 만족하는 것일 것

$$P_{or} / P \geq 4$$

이 식에서

P_{or} 는 붐좌굴하중(톤)

P는 1)에 따른 P와 같다

(나) 최대응력(σ)은 재료의 인장강도의 4분의 1 이하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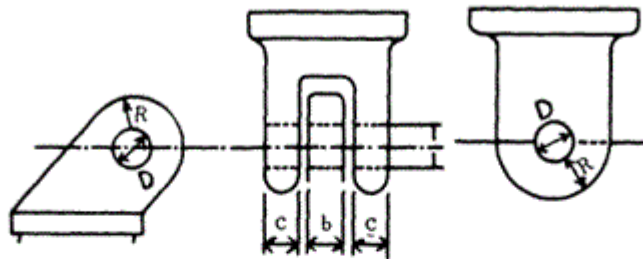
11) 쇠붙이

가) 데릭뿔의 상단부쇠붙이, 하단부아이, 토펙브래킷 및 구스넥브래킷은 각각 한국산업규격 KS V 2211 "강판제 데릭뿔", KS V 2212 "하역토펙 브래킷" 및 KS V 2213 "데릭 구스넥 베어링"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그 치수는 다음에 따를 것. 다만, 제한하중이 50톤을 초과하는 장치용의 것에 대하여는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이 기준에 따른 치수는 한국산업규격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 중 SF440A 또는 한국산업규격 KS D 4101 "탄소강 주강품" 중 SC410의 규격에 적합한 재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것을 표시한다.

(1) 데릭뿔의 하단부아이 및 구스넥브래킷과 핀의 치수는 다음 조건식을 만족하는 것일 것

$$\begin{aligned} b &\geq e_1 \sqrt{P} \\ d &\geq e_1 \sqrt{P} \\ c &\geq 0.55 e_1 \sqrt{P} \\ 2 &\geq D - d \geq 1 \\ R &\approx D \end{aligned}$$

이 식에서 b, c, d, D, R는 다음 그림 1에 따른 치수(밀리미터)



(그림 1)

e_1 은 제한하중이 10톤 이하인 경우에는 15.6, 15톤 이상 50톤 미만인 경우에는 14.0. 이 경우 제한하중이 중간 값인 경우에는 보간법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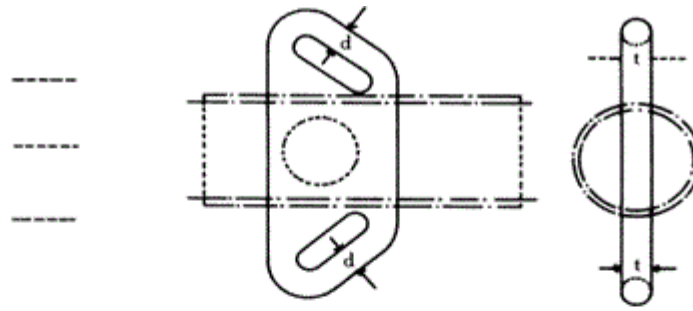
P는 10)나) 1)에 따른 P와 같다.

(2) 데릭뿔의 상단부쇠붙이의 치수는 그 형상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식을 만족하는 것일 것

$$\begin{aligned} (가) \quad d &\geq e_2 \sqrt{T} \\ t &\geq e_2 \sqrt{T} \end{aligned}$$

이 식에서

d, t는 그림 2에 따른 치수



(그림 2)

e_2 는 제한하중이 10톤 이하인 경우에는 12.5, 15톤 이상 50톤 이하인 경우에는 11.2. 다만, 제한하중이 중간 값인 경우에는 보간법에 따른다.

T는 다음에 따른 값

$T = a_1 \cdot a_2 \cdot W$ (토펙리프트용 활차쇠붙이의 경우)

$T = \lambda \cdot W$ (하역줄용 활차쇠붙이의 경우)

이 식에서

a_1 는 10)나) (1)에 따른 a_1 과 같다.

W는 제한하중(톤)

a_2 는 다음 표에 따른 값. 다만, 동표에 따른 값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보간법에 따른다.

| $\ell / (h - h')$ | | 2.0 | 1.9 | 1.8 | 1.7 | 1.6 | 1.5 | 1.4 | 1.3 | 1.2 |
|-------------------|----------------------|------|------|------|------|------|------|------|------|------|
| a_2 | W가 10톤 이하인 경우 | 1.99 | 1.90 | 1.81 | 1.73 | 1.65 | 1.57 | 1.49 | 1.42 | 1.35 |
| | W가 15톤 이상 50톤 이하인 경우 | 1.82 | 1.73 | 1.65 | 1.57 | 1.49 | 1.41 | 1.33 | 1.26 | 1.19 |

비고

1. ℓ 은 데릭몸의 유효길이(미터)
2. h' 는 3)가) (3)에 따른 h' 와 같다.
3. h 는 2)에 따른 h 와 같다.

λ 는 다음 표에 따른 값. 다만, 하역줄이 데릭몸의 상단부에 고정된 시브를 통하여 포스트의 정부로 유도되는 배치로 되어 있는 것은 1.0으로 한다.

| 하역줄용 활차의 시브수의 합계 | 1 | 2 | 3 | 4 | 5 | 6 | 7 | 8 |
|------------------|------|------|------|------|------|------|------|------|
| λ | 2.10 | 1.58 | 1.40 | 1.31 | 1.26 | 1.23 | 1.20 | 1.18 |

(나) $R \geq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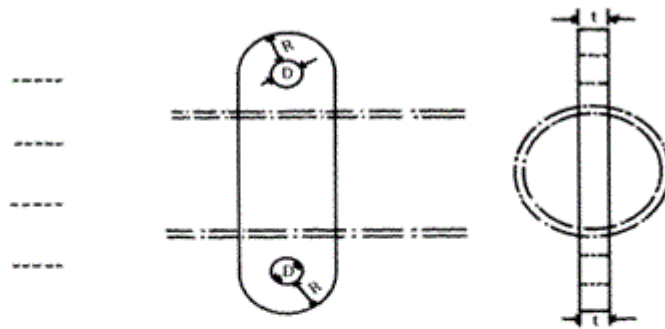
$$t \geq e_1 \sqrt{T}$$

다만, R가 특히 큰 경우에는 다음 조건식을 만족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t \cdot (R - D/2) \geq e_2 \cdot T$$

이 식에서

R, D, t는 그림 3에 따른 치수(밀리미터)



(그림 3)

e_2 는 제한하중이 10톤 이하인 경우에는 122, 15톤 이상 50톤 이하인 경우에는 98. 이 경우 제한하중이 중간 값인 경우에는 보간법에 따른다.

e_1 은 (1)에 따른 e_1 과 같다.

T는 (가)에 따른 T와 같다.

(3) (1) 또는 (2)에 따르지 아니하는 부분의 치수는 해당 부분에 가하여지는 힘에 대하여 적당한 것일 것

나) 데릭뿔, 마스트 및 선체구조에 영구적으로 장치되는 부착물은 양질의 것 이어야 하며, 적당한 치수의 것일 것

2. 제한하중 등의 확인을 위한 기준

가. 하역장치는 다음 표에 따른 하중시험을 수행하여 이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 제한하중 | 시험하중 |
|----------------|------------------------|
| 20톤 미만 | 제한하중의 1.25배의 하중 |
| 20톤 이상 50톤 미만 | 제한하중에 5톤을 가한 하중 |
| 50톤 이상 100톤 미만 | 제한하중의 1.1배의 하중 |
| 100톤 이상 |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중 |

나. 가목에 따른 하중시험은 시험하중에 상당하는 중량물을 달아올린 후 사용하는 최대의 아웃리치까지의 사이 및 주행예정거리에서 선회 또는 이동시키는 방법에 따라 한다. 다만, 수리 또는 변경이 가하여진 하역장치에 대하여는 스프링저울 또는 하이드로릭밸런스를 사용하여 선회 또는 이동의 양단에서 5분간 연속하여 시험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을 부하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

다. 데릭장치에 대한 나목의 하중시험은 데릭뿔의 수평면에 대한 각도를 제한하중이 10톤 이하는 15도, 제한하중이 10톤 이상인 것은 25도로 하여 수행한다. 다만, 제한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을 부하하여 사용하는 범위에 있어서의 최소의 각도가 이들 각도를 넘는 경우에는 그 최소의 각도로 할 수 있다.

라. 지브크레인에 대한 나목의 하중시험은 그 선회반경을 사용되는 범위 중 최소치와 최대치로 하여 수행한다.

마. 하중시험 시에는 원치의 제동장치에 대한 효력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만, 원치 단독의 하중시험을 시행하여 제동장치의 효력시험이 확인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하역장치의 안전성 확보 등

가. 데릭뿔과 데릭포스트의 접합부는 데릭뿔이 지지부부터 이탈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주행크레인은 차축 또는 차가 파손된 경우에 전복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다. 동력장치의 기어 그 밖의 전도장치, 축계, 대전부 및 증기관에는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덮개, 둘러싸개 등의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4. 하역원치의 설비요건 등

가. 원치(토폰리프트원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제한하중에 상당하는 중량물을 올리고 내리는 동안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제동장치(전동원치에 있어서는 전자브레이크를 말한다)를 설비한 것으로서 로프가드가 부착되어야 하며(데릭장치에 사용되는 원치로 한정한다) 원치드럼의 양단에 있어서의 귀의 높이는 권상용 와이어로프를 빠짐없이 또한 여유를 남기지 아니하고 감는 경우 그 로프지름의 2배 이상의 여유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증기 원치의 배기관의 개구단은 배기가 취급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배치된 것이어야 한다.

다. 유압 원치에는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전동 원치는 다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제어기에 근접한 위치에 전로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모터의 주회로 전원으로부터 분리하는 스위치를 근접한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2) 과부하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비하거나 이에 준하는 안전장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다만, 교류전동원치 중 극수변환방식의 것에는 과부하계전기를 설비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하역장구의 제한하중

하역장구(하역장치에 사용되는 체인, 링, 훅, 섹클, 스위블, 리깅스크류, 활차 및 로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한하중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파괴강도에 대하여는 안전계수가 다음 표에 따른 값 이상일 것. 다만, 와이어로프의 파괴강도는 절단시험을 하여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 구 분 | | 안전계수 |
|-------------|-----------------|------|
| 체 인 | | 4.5 |
| 와이어로프 | | 5 |
| 와이어로프 외의 로프 | | 7 |
| 그 밖의 하역장구 | 제한하중이 10톤 이하인 것 | 5 |
| | 제한하중이 10톤 초과인 것 | 4 |

나. 로프 외의 하역장구는 다음 표의 시험하중에 따른 하중시험을 하여 이상이 없는 것일 것

| 구 분 | | 시 험 하 중 |
|--------------|-----------------------|------------------|
| 단활차 | | 제한하중의 4배의 하중 |
| 단활차
외의 활차 | 제한하중 20톤 이하 | 제한하중의 2배의 하중 |
| | 제한하중 20톤 초과
40톤 이하 | 제한하중에 20톤을 가한 하중 |
| | 제한하중 40톤 초과 | 제한하중의 1.5배의 하중 |
| 그 밖의 하역장구 | | 제한하중의 2배의 하중 |

6. 크레인 권위의 설비요건

크레인의 권위에 대한 설비요건에 대하여는 제4호에 따른 하역원치의 기준을 준용한다.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19의2] <개정 2023. 4. 25.>

행정처분기준(제69조의6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을 수 없다.

다.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나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라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라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31조의2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 법 제31조의4
제1항제1호 | 등록취소 | | |
| 2. 법 제31조의2 각 호에 따른 어선중개업의 등록요건에 미달된 경우 | 법 제31조의4
제1항제2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3. 법 제31조의3제1호부 | 법 제31조의 | 등록취소 | | |

| | | | | | |
|--|------------------------|-------------|-------------|-------------|--|
| 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법 제31조의3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으로 교체 임명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4
제1항제3호 | | | | |
| 4. 법 제31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을 작성 또는 발급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 사본을 3년 미만으로 보존하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의
4
제1항제4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 5. 법 제31조의8제1항에 따른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그 밖의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법 제31조의
4
제1항제5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 6.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 법 제31조의
4
제1항제6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 7.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31조의
4
제1항제6호 | 등록취소 | | | |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20] <개정 2025. 12. 19.>

어선의 건조·개조허가 등의 수수료(제73조의2 관련)

1. 어선의 건조·개조허가 수수료

(단위: 원)

| 구분 | 수수료 | |
|--|-------|-------|
| | 건조허가 | 개조허가 |
| 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에 사용할 어선 | 2,000 | 1,000 |
| 나.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험어업, 연구어업 또는 교섭어업에 사용할 어선 | 1,000 | 1,000 |
| 다.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외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할 수산물운반선 | 2,000 | 1,000 |
|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에 관한 기술보급, 시험·조사 또는 지도·감독에 사용할 어선 | 1,000 | 1,000 |
| 비고 | | |
| 1. 건조허가는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허가 및 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 | |
| 2. 개조허가는 개조허가 또는 개조발주허가 및 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 | |

1의2. 어선건조·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수수료

(단위: 원)

| 구분 | 수수료 |
|----------------------|---------|
| 어선건조·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 100,000 |

2. 어선용품 등의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 수수료

(단위: 원)

| 구분 | 수수료 |
|--------------|-------|
|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 | 3,000 |

3. 지정사업장의 지정 수수료

(단위: 원)

| 구분 | 수수료 |
|----------------|---------|
| 가. 지정건조사업장의 지정 | 100,000 |
| 나. 지정제조사업장의 지정 | 100,000 |
| 다. 지정정비사업장의 지정 | 100,000 |

비고

지정사업장의 지정은 「어선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지정대상물건별로 지정하며, 물건을 추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의 물건별 추가 또는 변경 수수료는 30,000원으로 한다.

4. 수수료의 납부방법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6. 30.>

어선 []건조 []건조발주 허가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해양수산부: 4일
시·군·구: 3일 |
| 소유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전화번호) | | |
| 건조어선 | 주요치수(m) | 길이: 너비: | 선체재질 []강 []목
[]강화플라스틱(FRP)
[]그 밖의 재질() |
| | 총톤수 | 톤 | 추진기관 기관 마력 대 |
| | 선적항 | 어업의 종류 | |
| 추진계획 |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 준공예정일 |
| | 재원구분 | [] 자기부담 만원 | [] 정부지원 만원 |
| | 건조장소 | 조선소명 | |
| 건조사유 | | | |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 |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20 또는 조례에 따름 |
|------|----|--------------------------------------|

유의사항

1. 벌칙규정

어선의 건조허가를 받지 않고 어선을 건조하거나 건조를 발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어선의 건조·건조발주 허가기관

가. 해양수산부장관

- 1) 원양어업에 사용할 어선
- 2)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험어업, 연구어업 또는 교습어업에 사용할 어선
- 3) 외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할 수산물운반선
- 4)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에 관한 기술보급·시험·조사 또는 지도·감독에 사용할 어선

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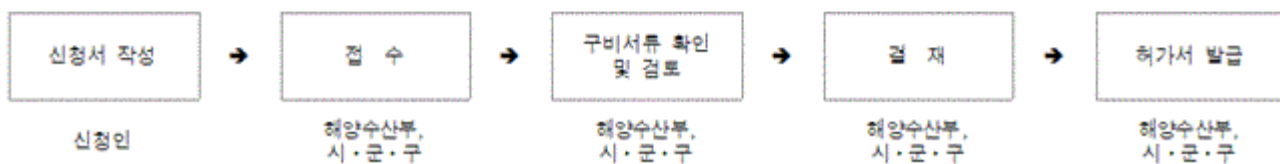
가목의 어선을 제외한 어선

3. 그 밖의 유의사항

가. 건조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총톤수의 측정을 받아야 합니다.

나. 건조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어선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총톤수 20톤 이상의 어선은 관할 등기소에 선박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6. 28.>

어선 []개조 []개조발주 허가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해양수산부: 4일
시·군·구: 3일 |
| 소유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전화번호) | | |
| 개조어선 | 어선번호 | | |
| | 어선의 명칭 | | 선 적 항 |
| | 구 분 | 개조 전 | 개조 후 |
| | 주요치수
(m) | 길이: 너비: 깊이: | 길이: 너비: 깊이: |
| | 총 톤 수 | 톤 | 톤 |
| | 추진기관 | 기관 마력 대 | 기관 마력 대 |
| | 구조·설비 | | |
| | 어업의 종류 | 어업 | 어업 |
| 추진계획 | 착공예정일
년 월 일 | 준공예정일
년 월 일 | |
| | 개조장소 | 조선소명 | |
| 개조사유 | | | |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20 또는 조례에 따름 |
|------|----|--------------------------------------|

유의사항

1. 벌칙규정

어선의 개조허가를 받지 않고 어선을 개조하거나 개조를 발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어선의 개조·개조발주 허가기관

가. 해양수산부장관

- 1) 원양어업에 사용할 어선
- 2)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험어업, 연구어업 또는 교습어업에 사용할 어선
- 3) 외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할 수산물운반선
- 4)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에 관한 기술보급·시험·조사 또는 지도·감독에 사용할 어선

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가목의 어선을 제외한 어선

3. 그 밖의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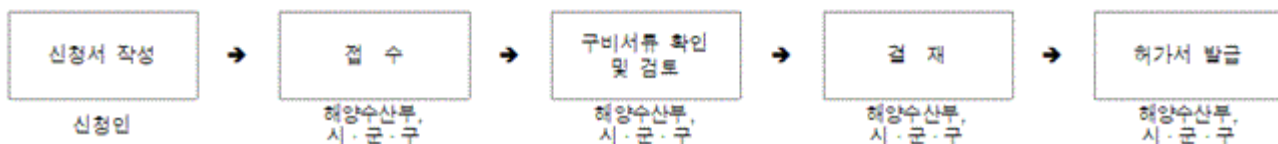
가. 다음의 경우는 어선의 개조 또는 개조발주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어선의 주요치수(길이·너비·깊이)를 변경하는 경우
- 2) 어선의 추진기관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 3) 어선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어업의 종류를 변경할 목적으로 어선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나.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과 내수면어업에 사용할 어선은 개조·개조발주허가가 면제됩니다.

다.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6. 28.>

어선 []건조 []건조발주 []개조 []개조발주]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알록)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해양수산부 : 4일
시·군·구 : 3일 |
|------|------|------|--------------------------|

| | | |
|-----|---------|------------------|
| 소유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 | |
|--------|------|-----|------|-------|
| 당초허가사항 | 허가번호 | 제 호 | 허가일자 | 년 월 일 |
|--------|------|-----|------|-------|

| | | | |
|------|-------------|-------------|-------------|
| 변경사항 | 구 분 | 당 초 | 변 경 |
| | 어선소유자 | | |
| | 선 적 항 | | |
| | 어업의 종류 | 어업 | 어업 |
| | 주요치수
(m) | 길이: 너비: 깊이: | 길이: 너비: 깊이: |
| | 총 톤 수 | 톤 | 톤 |
| | 추진기관 | 기관 마력 대 | 기관 마력 대 |
| | 그 밖의 설비 | | |

| | |
|------|--|
| 변경사유 | |
|------|--|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20 또는 조례에 따름 |
|------|----|--------------------------------------|

유의사항

1. 벌칙규정

어선건조 등의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어선을 건조 또는 개조하거나 건조 또는 개조를 발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허가사항 변경허가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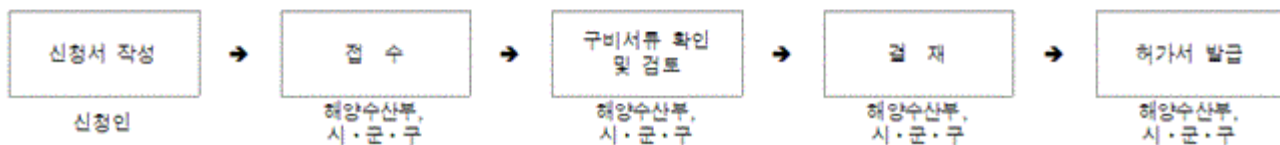
가. 해양수산부장관

- 1) 원양어업에 사용할 어선
- 2)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험어업, 연구어업 또는 교습어업에 사용할 어선
- 3) 외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할 수산물운반선
- 4)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에 관한 기술보급·시험·조사 또는 지도·감독에 사용할 어선

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가목의 어선을 제외한 어선

처리절차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10.30>

제 호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서

| | | | | |
|------|---------|-----|------|-----|
| 소유자 | 성명(법인명) | | | |
| | 주소 | | | |
| 건조어선 | 주요치수(m) | 길이: | 너비: | 깊이: |
| | 총 톤 수 | 톤 | 선체재질 | |
| | 추진기관 | 기관 | 마력 | 대 |
| | 선 적 항 | | | |
| | 어업의 종류 | | | |
| 건조장소 | 어업 | | | |
| 허가조건 | | | | |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10.30>

제 호

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서

| | | | | | | |
|------|-------------|------|-----|-------|------|---------|
| 소유자 | 성명(법인명) | | | | | |
| | 주소 | | | | | |
| 개조어선 | 어선번호 | | | | | |
| | 어선의 명칭 | | | 선 적 항 | | |
| | 구 분 | 개조 전 | | | 개조 후 | |
| | 주요치수
(㎜) | 길이: | 너비: | 깊이: | 길이: | 너비: 깊이: |
| | 총 톤 수 | 톤 | | | 톤 | |
| | 추진기관 | 기관 | 마력 | 대 | 기관 | 마력 대 |
| | 그 밖의 설비 | | | | | |
| | 어업의 종류 | 어업 | | | 어업 | |
| 개조장소 | | | | | | |
| 개조사유 | | | | | | |
| 허가조건 | | | | | | |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10.30>

제 호

어선건조(건조발주·개조·개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서

| | | |
|-----|---------|--|
| 소유자 | 성명(법인명) | |
| | 주소 | |

| | | |
|--------|----------|-----------|
| 당초허가사항 | 허가번호 제 호 | 일 자 년 월 일 |
| 구 분 | 당 초 허 가 | 변 경 허 가 |
| 변경사항 | | |
| 변경사유 | | |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어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5. 12. 19.>

어선건조·개조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란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5일 |
| 신 청 인 | 업체명 | | |
| | 성명(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사 업 장 | 소재지 | | |
| | 전화번호 | | |
| 업 종 | 건조업 [], 개조업 [], 수리업 [] | | |
| 어선의 종류 | 강화플라스틱재 [], 알루미늄합금재 [], 강재 [], 목재 [] | | |
| 구 분 | 당 초 | 변 경 | |
| 변경사항 | | | |

「어선법」 제9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동·서·남해 어업관리단장

귀하

| | | |
|---------------|---|-------------------------------------|
| 신청인
첨부서류 | 1. 등록을 하려는 경우: 「어선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장비·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
| | 2.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가.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증
나.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20 제1호의2에
따름 |
| 처리절차 | | |
| 신청서 작성
신청인 | → 접수 | → 검토
어업관리단 |
| | | →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증 발급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어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25. 12. 19.>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증

발 급 번 호: 제 _____ 호

| | | |
|-------------|----------------------------------|--|
| 사
업
자 | 업체명 | |
| | 성 명(대표자 성명) | |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 | |
| 업 종 | 건조업 [] 개조업 [] 수리업 [] | |
| 어선의 종류 | 강화플라스틱재 [] | |
| | 알루미늄합금재 [] | |
| | 강 재 [] | |
| | 목 재 [] | |

「어선법」 제9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이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동·서·남해 어업관리단장 직인

■ 어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25. 12. 19.>

어선건조·개조업 등록대장

(앞쪽)

| | | | | |
|--------------|--------|--------|-------------------|------|
| 발 급 번 호 | | 등록 연월일 | | |
| 업 체 명 | | | | |
| 성 명(대표자 성명) | | | |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 |
| 사업장 소재지 | | | | |
| 업종 및 어선의 종류 | | | | |
| 구 분 | 최초 등록 | 변경 등록 | 변경 등록 | |
| 업 종 | | | | |
| 어선의 종류 | | | | |
| 시설 현황 | | | | |
| 순번 | 시설의 구분 | 시설 소재지 | 소유형태 | |
| | | | | |
| | | | | |
| | | | | |
| 장비 현황 | | | | |
| 순번 | 장비의 구분 | 수 량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력 현황 | | | | |
| 순번 | 성명 | 자격의 구분 | 자격번호 또는
선원수첩번호 | 경력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뒤쪽)

[illegible]

[서식 10] 삭제 <1999.5.17>

[서식 11] 삭제 <1999.5.17>

[서식 12] 삭제 <1999.5.17>

[서식 13] 삭제 <1999.5.17>

[서식 14] 삭제 <1999.5.17>

[서식 15] 삭제 <1999.5.17>

[서식 16] 삭제 <1999.5.17>

[서식 17] 삭제 <1999.5.17>

[서식 18] 삭제 <1999.5.17>

[별지 제19호서식] 삭제 <2009.12.14>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0. 9. 3.>

어선 총톤수 [] 측정 [] 재측정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알록)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측정요청일자 + 5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전화번호) | | |
| 측정(재측정)
어선 명세 | 어선번호 | | |
| | 어선의 종류 [] 동력 [] 무동력 | | 어선의 명칭
(원명:) |
| | 선적항 | | 진수 연월일 년 월 일 |
| | 주요 치수
(m) | 길이: 너비: 깊이: | 선체 재질 [] 강 [] 목
[] 강화플라스틱(FRP)
[] 그 밖의 재질() |
| | 선적항 | | 조선자 |
| 측정(재측정)을 받으려는 일자 | | 년 월 일 | |
| 측정(재측정)을 받으려는 장소 | | | |
| 신청 사유 | | | |

「어선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한 국 선 급 회 장 귀하
대 한 민 국 영 사

| | | |
|------|--|-----------------------------------|
| 첨부서류 | 1. 도면(측정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에 한정합니다)
가. 일반배치도
나. 선체선도
다. 중앙횡단면도
라. 강재배치도 또는 재료배치도
마. 상부구조도
바. 삭제
사.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총톤수의 측정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조선지·조선자·진수일 및 선박의 원명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에 한정합니다) | 수수료
대형 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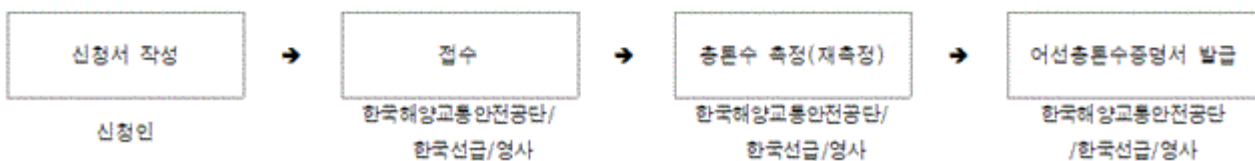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

유의사항

○ 총톤수 측정 또는 재측정 시기

- 어선의 건조·건조발주허가를 받아 어선을 건조한 때
- 어선의 수리 또는 개조로 인하여 총톤수에 변경이 생긴 때
- 외국적 어선을 수입하여 우리나라 어선으로 등록하려 하는 때
- 외국에서 취득한 어선을 외국에서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처리절차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0. 9. 3.>

제 호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 | |
|-----|----------------|
| 소유자 | 성명(법인명) |
| | 주 소
(전화번호) |

| 어선번호 | 총 톤 수 | | 톤 |
|-------------------|-------|------------|------------------|
| 호출부호 또는 명칭 | 용적 | 폐위장소의 합계용적 | ㎥ |
| 어선의 종류 | | 상갑판아래의 용적 | ㎥ |
| 어선의 명칭 | | 상갑판위의 용적 | 합계용적
㎥ |
| 선 적 항 | | | 선수투의 용적
㎥ |
| 선체재질 | | | 선교투의 용적
㎥ |
| 범선의 돛
(범장, 帆裝) | | | 선미투의 용적
㎥ |
| 추진기관 | | | 갑판실의 용적
㎥ |
| 추진기 | | | 그 밖의 장소의 용적
㎥ |
| 조선지 | | 제외장소의 용적 | 합계용적
㎥ |
| 조선자 | | | 선수투의 용적
㎥ |
| 진수연월일 | | | 선교투의 용적
㎥ |
| 주요치수 | 길이 | | 선미투의 용적
㎥ |
| | 너비 | | 갑판285용적
㎥ |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0. 9. 3.>

국제통수 []증서 []확인서 발급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측정요청일자 + 7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전화번호) | | |
| 어선내역 | 어선번호 | 어선의 명칭 | |
| | 선 적 항 | 진수연월일 | 년 월 일 |
| | 총 통 수
톤 | 국제통수 | 톤 |
| 측정(재측정)을 받으려 하는 일자 | | 년 월 일 | |
| 측정(재측정)을 받으려 하는 장소 | | | |

「어선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한 국 선 급 회 장 귀하
대 한 민 국 영 사

| | | |
|------|---|---------------------------------------|
| 첨부서류 |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
3. 중앙횡단면도
4. 강재배치도 또는 재료배치도
5. 상부구조도
6. 삭제 <2014.12.31.>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통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수수료

대형 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
|------|---|---------------------------------------|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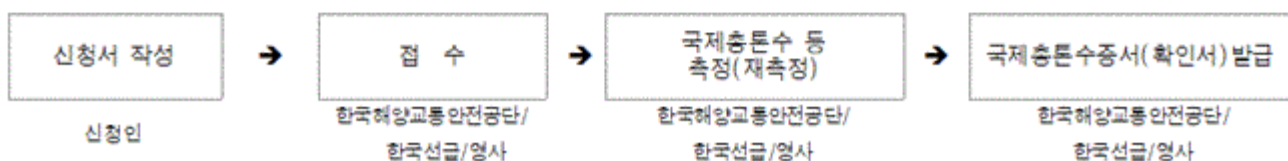
○ 벌칙규정

-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으로서 국제통수증서를 선내에 갖추지 않고 국제항해에 종사하거나 국제통수증서를 반납(반납할 수 없는 경우는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그 밖의 유의사항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은 국제통수증서를 발급받아 배안에 갖추어야 합니다.
-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어선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어선은 국제통수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앞쪽)

국제톤수증서(1969)

INTERNATIONAL TONNAGE CERTIFICATE(1969)

증서번호 : 제 - 호
Certificate No. :

1982년 7월 18일에 발효된 「1969년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_____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onnage Measurement of Ships, 1969,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which the Convention came into force on the 18th day of July, 1982 by _____.

| 어선의 명칭
Name of Ship | 어선번호 또는 호출번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 선적항
Port of Registry | 연월일(주)
*Date |
|------------------------|---|-------------------------|-----------------|
| | | | |

(주) 용골(선체 중앙 뼈대)이 거치되었거나 유사한 건조단계에 있었던 일자[협약 제2조(6)] 또는 선박에 중요한 변경 또는 개조를 한 일자[협약 제3조(2)(b)]

* Date on which the keel was laid or the ship was at similar stage construction [Article 2(6)] or date on which the ship underwent alterations or modifications of a major character[Article 3(2)(b)], as appropriate.

| 주요치수
MAIN DIMENSIONS | | |
|---|--|--|
| 길이 [협약 제2조(8)]
Length [article 2(8)] | 너비 [협약부속서 제2규칙(3)]
Breadth [Regulation2(3)] | 선박의 중앙에서 상갑판까지의 깊이 [협약부속서 제2규칙(2)]
Moulded Depth amidships to the Upper Deck [Regulation2(3)] |
| | | |

| 선박의 톤수
THE TONNAGE OF THE SHIP ARE | |
|---------------------------------------|----------------------|
| 국제총톤수
GROSS TONNAGE | 순 톤 수
NET TONNAGE |
| _____ | _____ |

이 증서는 1969년 선박톤수증서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이 선박의 톤수가 결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tonnages of this ship have been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International Convention of Tonnage Measurement of Ships, 1969.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에서 발행하였습니다.
(발행일자) (증서의 발행장소)
Issued at _____, the _____ day of _____
(Place of issue of certificate) (date of issue)

해양수산부장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서명자는 이 증서를 발행함에 있어서 위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 받았음을 선언합니다.

The under signed declares that he is duly authorized by the said Government to issue this certificate.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한국선급회장

President of Korean Register of Shipping

(뒤쪽)

| 톤수에 포함되는 장소
SPACES INCLUDED IN TONNAGE | | | | | |
|---|-----------------|---------------|---|-----------------|---------------|
| 국제총톤수
GROSS TONNAGE | | | 순 톤 수
NET TONNAGE | | |
| 장소의 명칭
Name of Space | 위 치
Location | 길 이
Length | 장소의 명칭
Name of Space | 위 치
Location | 길 이
Length |
| | | | | | |
| | | | 여객의 정원수(협약부속서 제4규칙(1))
Number of passengers(Regulation 4(1))

정원 8인 이하의 여객실의 여객정원수
Number of passengers in cabins with not more than 8 berths

그 밖의 여객정원수
Number of other passengers | | |
| 제외장소[협약부속서 제2규칙(5)]
Excluded spaces [Regulation 2(5)]

위 장소 중 폐위장소 및 제외장소에 모두 해당되는 곳은 별표(*)로 표시합니다.
An asterisk(*) should be added to those spaces listed above which comprise both enclosed and excluded spaces. | | | 형 흘수[협약부속서 제4규칙(2)]
Moulded draught [Regulation 4(2)] | | |
| 최초의 측정일자 및 장소
Date and place of original measurement | | | | | |
| 전회의 측정일자 및 장소
Date and place of last previous remeasurement | | | | | |
| 비 고
REMARKS | | | | | |

(앞쪽)

국제톤수확인서

TONNAGE CERTIFICATE

증서번호 : 제 - 호
Certificate No. :

대한민국의 권한으로 _____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y _____.

| 어선의 명칭
Name of Ship | 어선번호 또는 호출번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 선적항
Port of Registry | 연월일(주)
*Date |
|------------------------|---|-------------------------|-----------------|
| | | | |

(주) 용골(선체 중앙 뼈대)이 거치되었거나 유사한 건조단계에 있었던 일자[협약 제2조(6)] 또는 선박에 중요한 변경 또는 개조를 한 일자[협약 제3조(2)(b)]

* Date on which the keel was laid or the ship was at similar stage construction [Article 2(6)] or date on which the ship underwent alterations or modifications of a major character[Article 3(2)(b)], as appropriate.

| 주요치수
MAIN DIMENSIONS | | |
|---|--|---|
| 길이 [협약 제2조(8)]
Length [article 2(8)] | 너비 [협약부속서 제2규칙(3)]
Breadth [Regulation2(3)] | 선박의 중앙에서 상갑판까지의 깊이 [협약부속서 제2규칙(2)]
Moulded Depth amidships to the Upper Deck
[Regulation2(3)] |
| | | |

| 선박의 톤수
THE TONNAGE OF THE SHIP ARE |
|---------------------------------------|
|---------------------------------------|

국제총톤수
GROSS TONNAGE _____

순 톤 수
NET TONNAGE _____

이 증서는 1969년 선박톤수증서에관한국제협약에 따라 이 선박의 톤수가 결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tonnages of this ship have been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International Convention of Tonnage Measurement of Ships, 1969.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에서 발행합니다.
(발행일자) (증서의 발행장소)

Issued at _____, the _____ day of _____
(Place of issue of certificate) (date of issue)

해양수산부장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서명자는 이 증서를 발행함에 있어서 위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 받았음을 선언합니다.
The under signed declares that he is duly authorized by the said Government to issue this certificate.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한국선급회장
President of Korean Register of Shipping

(뒤쪽)

| 톤수에 포함되는 장소
SPACES INCLUDED IN TONNAGE | | | | | |
|---|-----------------|---------------|---|-----------------|---------------|
| 국제총톤수
GROSS TONNAGE | | | 순 톤 수
NET TONNAGE | | |
| 장소의 명칭
Name of Space | 위 치
Location | 길 이
Length | 장소의 명칭
Name of Space | 위 치
Location | 길 이
Length |
| | | | | | |
| | | | 여객의 정원수(협약부속서 제4규칙(1))
Number of passengers(Regulation 4(1))

정원 8인 이하의 여객실의 여객정원수
Number of passengers in cabins with not more than 8 berths

그 밖의 여객정원수
Number of other passengers | | |
| 제외장소[협약부속서 제2규칙(5)]
Excluded spaces [Regulation 2(5)]

위 장소 중 폐위장소 및 제외장소에 모두 해당되는 곳은 별표(*)로 표시합니다.
An asterisk(*) should be added to those spaces listed above which comprise both enclosed and excluded spaces. | | | 형흘수[협약부속서 제4규칙(2)]
Moulded draught [Regulation 4(2)] | | |
| 최초의 측정일자 및 장소
Date and place of original measurement | | | | | |
| 전회의 측정일자 및 장소
Date and place of last previous remeasurement | | | | | |
| 비 고
REMARKS | | | | | |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 25호서식] <개정 2020. 9. 3.>

재화중량톤수증서발급신청서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측정요청일자 + 7일 | |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어선내역 | 어선번호 | 어선의 명칭 | | | |
| | 선 적 항 | 진수연월일 | 년 | 월 | 일 |
| 재화중량톤수 또는 계획톤수 | | 톤 | | | |
| 측정(재측정)을 받으려는 일자 | | 년 월 일 | | | |
| 측정(재측정)을 받으려는 장소 | | | | | |

「어선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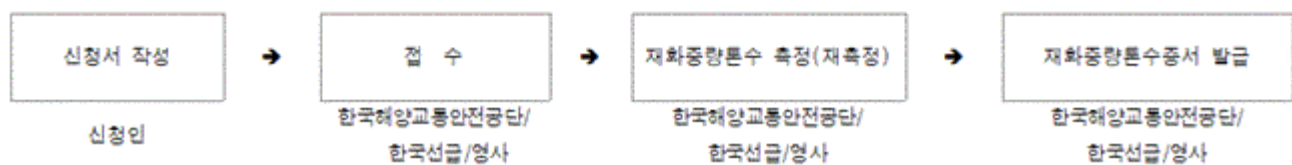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한 국 선 급 회 장 귀하
대 한 민 국 영 사

| | | |
|------|---|-----------------------------------|
| 첨부서류 |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
3. 중앙형단면도
4. 배수량 등 배의 성능에 관한 곡선도 또는 표 | 수수료
대형 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
|------|---|-----------------------------------|

유의사항

○ 어선의 안전항해를 위한 최대적재량을 확인하기 위해 어선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재화중량톤수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0. 9. 3.>

재화중량통수증서

DEADWEIGHT THONNAGE CERTIFICATE

증서번호 : 제 - 호
Certificate No. : 제 - 호

대한민국의 권한으로 _____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y _____.

| 어선의 명칭
Name of Ship | 어선번호 또는 호출번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 선적항
Port of Registry | 총톤수
Gross Tonnage | 연월일(주)
*Date |
|------------------------|---|-------------------------|----------------------|-----------------|
| | | | | |

(주) 용골(선체 중앙 뼈대)이 거치되었거나 유사한 건조단계에 있었던 일자 또는 개조를 한 일자

* Date on which the keel was laid or the ship was at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or date on which the ship underwent alterations or modifications of a major character, as appropriate.

| 주요치수
MAIN DIMENSIONS | | | |
|-------------------------|---------------|---|---|
| 길이
Length | 너비
Breadth | 선박의 중앙에서 상갑판까지의 형깊이
Moulded depth amid ships to the Upper Deck | 선박의 중앙에서 기준흘수선까지의 형깊이
Moulded depth amid ships to the Summer Load Line |
| | | | |

| 재화중량통수
DEADWEIGHT TONNAGE |
|------------------------------|
|------------------------------|

국제총톤수
GROSS TONNAGE _____

순톤수
NET TONNAGE _____

이 증서는 대한민국정부의 권한으로 재화중량통수가 결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deadweight tonnages of this ship have been determin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에서 발행합니다.

(발행일자)

(증서의 발행장소)

Issued at _____, the _____ day of _____

(Place of issue of certificate)

(date of issue)

해양수산부장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대한민국영사
The Consul of the Republic of Korea

서명자는 이 증서를 발행함에 있어서 위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 받았음을 선언합니다.
The under signed declares that he is duly authorized by the said Government to issue this certificate.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한국선급회장
President of Korean Register of Shipping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3. 2. 3.>

어선 []등록 []변경등록 어업 []변경허가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어선등록·어업변경허가 : 2일
어선변경등록 : 즉시
(선적항 변경등록의 경우: 2일) |
|------|------|---|

| | |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
|------|-----------------------|------------------------|
| 어선내역 | 어선번호 | 어선의 명칭 |
| | 어선의종류
[]동력 []무동력 | 추진기관
기관 마력 대 |
| | 총 톤 수
톤 | 주요치수(m)
길이: 너비: 깊이: |
| | 선 적 항 | 어업허가번호 |
| | 진수 연월일
년 월 일 | |

| | |
|-----------|------------------------------|
| 어선등록 신청사유 | [] 건조 [] 수입 [] 그 밖의 사유() |
|-----------|------------------------------|

| 구 분 | 당 초 | 변 경 |
|------|--|-----|
| 변경사항 | | |
| 변경사유 | [] 전입(주소 및 선적항 변경) [] 매매·전입(소유자 및 선적항 변경)
[] 매매(소유자 변경) [] 지분매매(소유자 변경)
[] 상속/증여(소유자 변경)
[] 기타(선명, 톤수재측정, 기관의 종류·마력 변경 등) | |

「어선법」 제13조제1항·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6조제1항·제28조제1항,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뒤쪽)

| | | |
|------|--|---------------|
| 첨부서류 | <p>1. 어선등록을 신청하는 경우</p> <p>가.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어선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경우에는 수산업 또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p> <p>나. 어선충돌수색정중명서</p> <p>다. 선박등기부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에 한정합니다)</p> <p>라. 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서류(어선을 대체하기 위해 건조 또는 건조발주한 경우에 한정합니다)</p> <p>※ 어선의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허가를 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p> <p>2. 어선의 변경등록을 신청하거나 「어선법」 제17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등록 신청과 함께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p> <p>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어선검사증서 및 매매·상속 관련 서류 등을 포함한다)</p> <p>나. 선박국적증서·선박국적증서영역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p> <p>다. 어업허가증</p> <p>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그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구획어업 중 건간망어업, 건망어업, 풀망어업, 선인망어업, 송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p> <p>※ 다목 및 라목의 서류는 「어선법」 제17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등록과 함께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만 첨부합니다.</p> | 수수로
조례에 따름 |
|------|--|---------------|

유의사항

1. 벌칙규정

- 가. 어선등록 시 교부된 선박국적증서 등을 선내에 갖추지 않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나. 어선등록사항의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2. 등록대상 어선

- 가. 건조 또는 건조발주의 허가를 받아 건조한 어선
- 나.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어선을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
- 다.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을 어선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라. 외국에서 수입한 선박을 어선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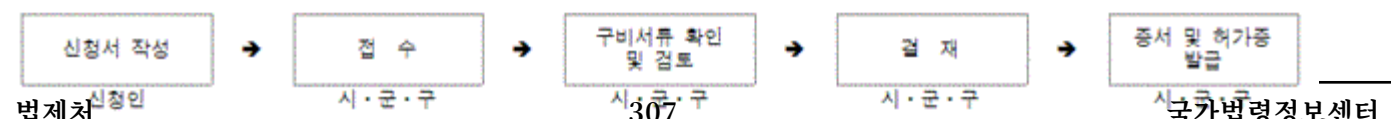
- 가. 어선의 명칭 또는 선적항을 변경하는 경우
- 나. 수리 또는 개조로 어선의 주요체수 또는 총톤수가 변경되는 경우
- 다. 추진기관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는 경우
- 라. 어선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 마. 그 밖의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4. 그 밖의 유의사항

- 가. 다음의 선박을 어선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수산업 또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교습에 종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1)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선박
 - 2)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
 - 3) 외국에서 수입한 선박
- 나. 총톤수 20톤 이상의 어선은 관할 등기소에 선박등기를 해야 합니다.
- 다. 어선등록을 한 어선의 소유자는 해당 어선에 어선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다만, 「수산업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어선표지판을 설치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어선번호판 부착을 면제합니다.
- 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30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어선등록 및 어업변경허가>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0. 9. 3.>

(앞쪽)

어 선 원 부

| | | | |
|--|-------------|------------|------------|
| 조 선 지 | | 조 선 자 | |
| 진수연월일 | | 원 명 | |
| 어선번호 | | | |
| 호출부호 | | | |
| 어선의 종류 | | | |
| 어선의 명칭 | | | |
| 선 적 항 | | | |
| 선체재질 | | | |
| 범선의 돛(범장, 帆裝) | | | |
| 주요
치수
(m) | 길 이 | | |
| | 너 비 | | |
| | 깊 이 | | |
| 총톤수(톤) | | | |
| 용적
(m³) | 폐위장소의 합계용적 | | |
| | 상갑판아래의 용적 | | |
| | 상갑판위의 용적 | | |
| | 선수루의 용적 | | |
| | 선교루의 용적 | | |
| | 선미루의 용적 | | |
| | 갑판실의 용적 | | |
| | 그 밖의 장소의 용적 | | |
| | 제외장소의 합계용적 | | |
| | 선수루의 용적 | | |
| | 선교루의 용적 | | |
| | 선미루의 용적 | | |
| | 갑판실의 용적 | | |
| | 그 밖의 장소의 용적 | | |
| 기관의 종류·마력 및 대수 | 기관 대
마력 | 기관 대
마력 | 기관 대
마력 |
| 추진기의 종류와 수 | 추진기 기 | 추진기 기 | 추진기 기 |
| 소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명칭·법인등록번호·주소) | | | |
| 등록 및 변경등록 연월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등록 및 변경등록사유 등 그 밖의
기재사항 | | | |

(뒤쪽)

[illegible][illegible]

[서식 29] 삭제 <1999.5.17>

[서식 30] 삭제 <1999.5.17>

[별지 제31호 서식] 삭제 <2012.6.7>

[서식 32] 삭제 <1999.5.17>

[별지 제33호 서식] 삭제 <2012.6.7>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7. 6. 28.>

어선등록말소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 신 청 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전화번호) | | |
| 어선내역 | 어선번호 | 어선의 명칭 | |
| | 어선의 종류
[] 동력 [] 무동력 | 선 적 항 | |
| | 총 톤 수
톤 | 어업의 종류
어업 | |
| 등록말소
사 유 | | | |

「어선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등록 말소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어선번호판
3. 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포함합니다) ·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4. 다음 각 목의 서류(「선박등기법」 제2조에 따른 선박등기 대상 어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선박등기부 등본
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대할할 수 있는 판결문의 등본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로
없 음 |
|------|---|------------|

210mm×297mm[백상지 80g/㎡]

유의사항

○ 벌칙규정

- 어선등록말소의 사유가 생긴 때에 30일 이내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등록말소어선의 어선번호판 및 선박국적증서 등을 반납하지 않거나 분실 등의 사유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등록말소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 어선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 멸실·침몰·해체 또는 노후·파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6개월 이상 항방불령이 된 경우

○ 선적항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 말소하는 경우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어선의 소유자가 등록말소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어선으로 영위하는 수산업의 허가·신고·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지난 경우, 다만, 「수산업법」·「원양산업발전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어선법」 제19조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수산업의 허가·신고·면허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직권으로 해당 어선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유의사항

- 어선의 말소등록의 사유가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 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 말소등록된 어선에 붙어 있는 어선번호판을 지체 없이 제거해야 하며, 14일 이내에 어선번호판 및 선박국적증서등을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 어선번호판 및 선박국적증서등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어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 <신설 2017. 6. 28.>

| 어선등록말소확인서
CONFIRMATION OF CANCELLATION OF FISHING VESSEL'S NATIONALITY | | | |
|--|--------------------------|-----------------------------|--|
| 소유자
(Owner) | 성명(법인명)
Name(Company) | | |
| | 주소
(Address) | | |
| 어선번호
(Distinctive Number) | | 어선의 명칭
(Name of Ship) | |
| 어선의 종류
(Kind of Ship) | | 선 적 항
(Port of Registry) | |
| 총톤수
(Gross Tonnage) | | 어업의 종류
(Type of Fishery) | |
| 말소일자
(Date of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 | | |
| 말소사유
(Reason of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 | | |
| <p>「어선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p> <p>It is hereby confirmed that the above described fishing vessel was canceled from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of Article 29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Fishing vessels Act.</p> | | | |
| <div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Y M D </div> | | | |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Official Position) | | |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width: 100px; height: 10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직인 </div> |

제 호

선박국적증서

| | | | | | |
|-------------------|-------|---------------|-------------|----------------|----------------|
| 소유자 | | 성명(법인명) | | | |
| | | 주소
(전화번호) | | | |
| 어선번호 | | 총 톤 수 | | 톤 | |
| 어선의 명칭 | | 용적 | 폐위장소의 합계용적 | m ³ | |
| 호출부호 또는 명칭 | | | 상갑판 아래의 용적 | m ³ | |
| 어선의 종류 | | | 상갑판 위의 용적 | m ³ | |
| 선체재질 | | | 선수루의 용적 | m ³ | |
| 선 적 항 | | | 선교루의 용적 | m ³ | |
| 범선의 돛
(범장, 帆裝) | | | 선미루의 용적 | m ³ | |
| 추진기관 | 기관 대 | | 갑판실의 용적 | m ³ | |
| 추진기 | 추진기 기 | | 그 밖의 장소의 용적 | m ³ | |
| 조선지 | | | 제외장소의 합계용적 | m ³ | |
| 조선자 | | | 선수루의 용적 | m ³ | |
| 진수연월일 | 년 월 일 | | 선교루의 용적 | m ³ | |
| 주요
치수 | 길이 | | m | 선미루의 용적 | m ³ |
| | 너비 | | m | 갑판실의 용적 | m ³ |
| | 깊이 | m | 그 밖의 장소의 용적 | m ³ | |

위의 사항은 모두 정확하며, 이 선박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뒤쪽)

[illegible]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7. 6. 28.>

(앞쪽)

제 호

선 적 증 서

| | | | |
|--------|---------------|-------|-------|
| 소유자 | 성명(법인명) | | |
| | 주소
(전화번호) | | |
| 어선번호 | | 주요치수 | 길 이 m |
| 어선의 명칭 | | | 너 비 m |
| 어선의 종류 | | | 깊 이 m |
| 선 적 항 | | 총 톤 수 | 톤 |
| 추진기관 | 기관 대 | | |
| 조 선 자 | | 진수연월일 | 년 월 일 |

「어선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뒤쪽)

[illegible]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7. 6. 28.>

(앞쪽)

제 호

등 록 필 증

| | | | | |
|--------|---------|----------|-----|-------|
| 신 청 인 | 성명(법인명) | | | |
| | 주소 | | | |
| | (전화번호) | | | |
| 어선번호 | | 주요
치수 | 길 이 | m |
| 어선의 명칭 | | | 너 비 | m |
| 어선의 종류 | | | 깊 이 | m |
| 선 적 항 | | 총 톤 수 | | 톤 |
| 조 선 자 | | 진수연월일 | | 년 월 일 |

「어선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뒤쪽)

[illegible]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13.10.30>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신청서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일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전화번호) | |
| 어선내역 | 어선번호 | 어선의 명칭 | |
| | 선 적 항 | 총 톤 수 톤 | |
| | 원증서명 | 원증서번호 | 제 호 |
| | 원증서발급관청 | 원증서발급일자 | 년 월 일 |

「어선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선박국적증서
2. 여권 | 수수료
없 음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어선의 국제항해 등으로 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어선이 외국에 있는 동안 선박국적증서를 멸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주재 대한민국 영사에게 가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포함합니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를 소지한 자가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반납하는 때에는 그 영역서도 같이 반납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접 수

시·군·구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

시·군·구

CERTIFICATE OF VESSEL'S NATIONALITY

Cert. No. _____

| | | | |
|-----------------------------------|-------------------|--------------------------------------|--------------|
| Owners | Name
(Company) | | |
| | Address | | |
| Official Number | | Total Capacity of
Enclosed spaces | cubic meters |
| Name of Vessel | | | |
| Signal Letters | | Under the Upper Deck | cubic meters |
| Kind of Vessel | | Closed-in Spaces above the upper | |
| Material of Hull | | deck | cubic meters |
| Port of Registry | | Forecastle | cubic meters |
| Riggings
(If a Sailing Vessel) | | Bridge | cubic meters |
| Type and Number of Engines | | Poop | cubic meters |
| Type and Number of Propellers | | Deck Houses | cubic meters |
| Where Built | | Other Spaces | cubic meters |
| Name of Builders | | Total Capacity of
Exempted spaces | cubic meters |
| Date of Launch | | Forecastle | cubic meters |
| Main Dimension | Length | Bridge | cubic meters |
| | Breadth | Poop | cubic meters |
| | Depth | Deck Houses | cubic meters |
| Gross Tonnage | | Other Spaces | cubic meters |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above described particulars are exact in all respect, and that the above-mentioned vessel is of Korean Nationality.

The day of .

REPUBLIC OF KOREA

직인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above is a true translation of "Certificate of Vessel's Nationality" of the above-mentioned Vessel.

The day of .

(Signature)
(Official Position)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21. 6. 30.>

어선검사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수검요청일자+25일 |
| 검사종류 | ☐ 최초의 정기검사 ☐ 정기검사 ☐ 제1종중간검사
☐ 제2종중간검사 ☐ 임시검사 ☐ 임시항행검사 ☐ 특별검사 | | |
| 소유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 주 소
(전화번호 :)
(전송 :) (전자우편 :) | | |
| 어 선 | 어선의 명칭 | 어선번호 | |
| | 수검요청일자 | 수검장소 | |
| 비 고 | | | |

「어선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제2항, 제44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선의 검사를 받기 위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한 국 선 급 회 장

귀하

(위쪽)

| | | |
|------|--|---|
| 첨부서류 | 1. 건조검사증서 또는 별도건조검사증서(최초로 항행에 사용하는 어선으로 한정합니다)
2. 해당 어선검사 관련 승인도면(도면승인을 한 대형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3. 예비검사증서·검정증서 또는 확인증(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4. 어선검사증서(최초의 정기검사 시는 제외합니다)
5. 어선의 운항계획서(임시항행검사로 한정합니다)
6. 특별검사와 관련되는 서류(특별검사로 한정합니다)
7. 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서 | 수수로

대형 검사기관의
수수로 기준에 따름 |
| 유의사항 | | |

□ 어선검사의 종류

- 정기검사: 최초로 항행의 목적에 사용하는 때 또는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행하는 정밀한 검사
- 중간검사: 정기검사와 다음의 정기검사 사이에 행하는 간단한 검사
- 특별검사: 「어선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때 행하는 간단한 검사
- 임시검사: 정기검사, 중간검사, 특별검사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행하는 검사
- 임시항행검사: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기 전에 어선을 임시로 항행의 목적으로 사용하려 하는 때 행하는 검사

□ 어선검사 면제대상어선

-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어선으로서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은 어선
-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일정기간 동안 운항하지 않을 목적으로 그 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한 후 해당 어선을 계류한 어선

□ 그 밖의 유의사항

- 정기검사는 해당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19. 8. 20.>

중간검사시기연기신청서

| | | | | | | | | |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 3일 | | (앞쪽) |
| 소유자 | 성 명
(법인명) | | | | | | | |
| | 주 소

(전화번호) | | | | | | | |
| 어선내역 | 어선의 명칭 | | | | 어선번호 | | | |
| | 선 적 항 | | | | 선 질 | | | |
| | 총 톤 수 | | | | 톤 어업의 종류 | | | |
| 검사시기를 연기받으려는
중간검사의 종류 | | | | | | | | |
|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 | | 년 월 | | 일부터 | | 년 월 | | 일까지 |
| 비 고 | | | | | | | | |

「어선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중간검사시기를 연기받기 위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한 국 선 급 회 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해당 어선의 황해, 조업일정 및 현재의 위치를 나타내는 서류
2. 어선검사증서 사본 | 수수료
대형 검사기관의
수수료 기준에 따름 |
|------|--|-------------------------------|

유의사항

□ 중간검사 연기신청

- 해외수역에서의 장기간 항행·조업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중간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유의사항

- 중간검사시기의 연기로 인하여 연기된 중간검사와 정기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제1종 중간검사와 제2종 중간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제1종 중간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처리절차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19. 8. 20.>

계선사유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 소유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 주 소

(전화번호) | | |
| 어선내역 | 어선번호 | 어선의 명칭 | |
| | 총 톤 수

톤 | 어업의 종류

어업 | |
| 계선사유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록) | | | |
| 계선기간 | | | |
| 계선장소 | | | |
| 수검예정일 | | | |

「어선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위의 어선에 대하여 계선하기 위해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귀하
한 국 선 급 회 장

| | | |
|------|--------|-----------|
| 첨부서류 | 어선검사증서 | 수수료
없음 |
|------|--------|-----------|

210mm×297mm[백상지 80g/㎡]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20. 9. 3.>

건조(별도건조) 검사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건조기간+25일
(별도건조검사의 경우 25일) |
| 건조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 주 소

(전화번호) | | |
| 소유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 주 소

(전화번호) | | |
| 건조어선
내역 | 건조번호 | 선 적 항 | |
| | 어선의 종류
[]동력 []무동력 | 선 질 []강 []목
[]강화플라스틱(FRP)
[]그 밖의 선질() | |
| | 어업의 종류 | 총 톤 수 톤 | |
| | 배의 길이 미터 | 추진기관 기관 마력 대 | |
| | 착공(예정)일 년 월 일 | 준공(예정)일 년 월 일 | |
| 요청내역 | 수검요청일자 년 월 일 | | |
| | 수검장소 | | |
| | 비 고 | | |

「어선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 및 제5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선의 건조(별도건조)검사를 받기 위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귀하
한 국 선 급 회 장

| | | |
|------|---|-------------------------------|
| 첨부서류 | 1. 건조검사 제출서류
가. 건조검사 관련 승인도면(도면을 승인한 대형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나. 예비검사증서, 검정증서, 건조·제조확인증 또는 정비확인증

2. 별도건조검사 제출서류
별도건조검사 관련 승인도면(도면을 승인한 대형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 수수료
대형 검사기관의
수수료 기준에 따름 |
|------|---|-------------------------------|

210mm×297mm[백상지 80g/㎡]

유의사항

□ 건조검사 대상 어선

○ 다음의 어선을 제외한 어선

- 무동력어선
-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어선
-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목선
- 외국의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정부 또는 국내외의 공인된 선박검사기관에서 건조검사에 준하는 검사를 받은 어선

□ 별도건조검사 대상 어선

- 외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어선
- 건조검사를 받지 않은 모든 어선

□ 건조검사를 받아야 하는 설비

- 선체, 기관, 배수설비, 조타·계선·양묘설비 및 전기설비
- 만재출수선(해당 어선만 검사받습니다)

□ 그 밖의 유의사항

- 건조검사는 해당 어선이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받아야 합니다.
- 건조검사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기본설계도면 외의 설계도면과 예비검사증서, 검정증서, 건조·제조확인증 또는 정비확인증은 해당 어선시설의 공사착수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건조검사에 합격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의 정기검사를 생략합니다.

처리절차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20. 9. 3.>

예비검사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수검요청일자 + 25일 |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
| | 주 소

(전화번호) | | | | |
| 어선용품의 내용 | | | | | |
| 품 명 | 규 격 | 형 식 | 수 량 | 제조번호 | 비 고 |
| | | | | | |
| 요청
내역 | 수검요청일자 | | 년 월 일 | 수검장소 | |
| | 신청구분 | | []제조 []개조 []수리·정비 []수입 | | |
| | 비 고 | | | | |

「어선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선용품에 대한 예비검사를 받기 위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한 국 선 급 회 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예비검사 관련 승인도면(제조·개조 또는 수입의 경우에 한정하며, 도면승인을 한 대형검사기관에 예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 수수료
대형 검사기관의
수수료 기준에 따름 |
|------|--|-------------------------------|

유의사항

□ 예비검사대상: 선체·기관·배수 등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어선용품

□ 그 밖의 유의사항

- 예비검사는 해당 어선용품의 제조·개조·수리·정비를 시작한 때부터 받아야 합니다.
- 평창식 구멍설비의 수리·정비에 따른 예비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곳 또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4조제4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평창식구멍설비정비시설통확인서를 발급 받은 곳에서 받아야 합니다.
- 예비검사에 합격한 어선용품에 대하여는 건조검사 또는 어선검사를 최초로 하는 검사에서 그 합격된 부분의 검사를 생략합니다.

처리절차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13.3.24>

팽창식 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신청서

(앞쪽)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5일 |
| 사업자 | 성명(법인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 | (전화번호) | | |
| 시설내역 | 소재지 | | |
| | 면적
(㎡) | | |
| | 인원

정비기술자: 명, 작업원: 명 | | |

「어선법 시행규칙」 제5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팽창식 구명설비에 대한 수리 또는 정비시설 등의 확인을 받기 위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 장관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시설명세서
2.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에 따른 정비기술자의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4 제4호에 따른 자체 정비기준 | 수수로
없음 |
|------|--|-----------|

210mm×297mm[백상지 80g/㎡]

유의사항

□ 평창식 구명설비의 종류

- 평창식 구명뗏목
- 평창식 구명부기
- 평창식 구명조끼
- 평창형(복합형) 구조정
- 강하식 탈승장치

□ 정비시설 등의 기준

- 시설: 작업장, 수세장, 누설시험장, 정비한 구명뗏목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중으로 겹쳐서 저장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부품진열장, 사무실 및 위험물 저장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 인원: 평창식 구명설비의 제작회사 또는 정비사업장에서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또는 이와 같은 정비기술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2명 이상 확보하고 정비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원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 그 밖의 유의사항

-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에 확인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제 호

팽창식 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

| | |
|----------------|---------|
| 수리 또는
정비사업자 | 성명(법인명) |
|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시설의
소재지 | |

「어선법 시행규칙」 제52조제5항에 따라 팽창식 구명설비에 대한 수리 또는 정비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19. 8. 20.>

별도건조검사증서

SPECIAL SHIP-BUILDING SURVEY CERTIFICATE

제 호
Certificate No. _____

| | |
|----------------|--------------------------|
| 건조자
Builder | 성명(법인명)
Name(Company) |
| | 주 소
Address |

| | | | |
|------------------------------|--|-------------------------------|-----------|
| 어선의 명칭
Name of Ship | | 건조번호
Building No. | |
| 선 적 항
Port of Registry | | 선 질
Ship Material | |
| 어업의 종류
Type of Fishery | | 계획총톤수
Desing Gross Tonnage | 톤
tons |
| 주요치수
Principal Dimensions | 길이: 미터, 너비: 미터, 깊이: 미터
Length : m, Breadth : m, Depth m | | |
| 추진기관
Main Engine | 기관 [킬로와트(kW)] [마력(PS)]
Type Output | | 대
Nos. |
| 비 고
Remarks | | | |

「어선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2 of the Fishing Vessels Act and Article 53.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s Act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Y M D

해양수산부장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한국선급회장)
 President of Korean Register of Shipping

직인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19. 8. 20.>

도면승인(변경)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알록)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25일 |
| 도면의 종류 | [] 건조검사 관련 도면 [] 별도건조검사 관련 도면 [] 정기검사 관련 도면
[] 중간검사 관련 도면 [] 임시검사 관련 도면 [] 특별검사 관련 도면
[] 예비검사 관련 도면 [] 만재흡수선 관련 도면 [] 복원성 관련 도면 | | |
| 신 청 인 | 성명(법인명) | | |
| | 주 소

(전화번호:)
(전송:) (전자우편:) | | |
| 어 선 | 어선의 명칭 | 어선번호
또는 건조번호 | |
| | 어업의 종류 | 총 톤 수 | |
| | 배의 길이 | 선 질 | |
| 어선용품 | 품 명 | 규 격 | |
| | 형 식 | | |
| 비 고 | | | |

「어선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면승인(변경)을 받기 위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한 국 선 급 회 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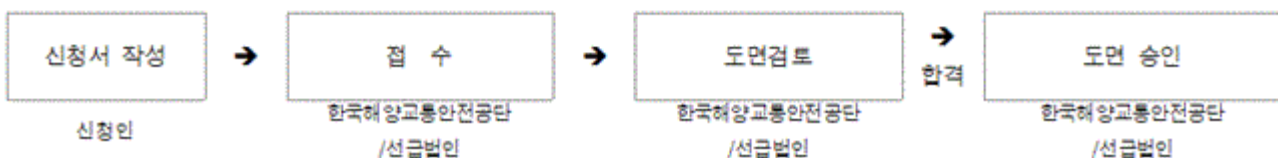
| | | |
|------|------------------------------|-------------------------------|
| 첨부서류 | 해당 어선 및 어선용품의 검사종류별 관련 도면 3부 | 수수료
대형 검사기관의
수수료 기준에 따름 |
|------|------------------------------|-------------------------------|

유의사항

□ 도면승인 신청

- 건조검사, 별도건조검사, 정기검사, 중간검사, 특별검사, 임시검사 및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어선의 도면에 대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어선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을 말합니다)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처리절차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13.3.24>

[]형식승인 []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5일 |
| 신 청 인 | 성 명 국문
(법인명) | 전 화 | | |
| | 영문 | 팩 스 | | |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홈페이지 | | |
| | 주 소 국문 | | | |
| | 영문 | | | |
| 제 조 자
(수입하여
형식승인받는
경우에 적으
십시오) | 성 명 국문
(법인명) | | | |
| | 영문 | | | |
| | 주 소 국문 | | | |
| | 영문 | | | |
| 형식승인
대상물건 | 품 명 | | | |
| | 규 격 | | | |
| | 형 식 | |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 | | | | |
| 변경사유 | | | | |
| 비 고 | | | | |

「어선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및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을 받기 위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형식승인신청 제출서류

- 형식승인에 필요한 서류

2.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 제출서류

-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20 제2호에 따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 확인



형식승인증서(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서) 발급

신청인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 <개정 2013.3.24>

형식승인증서

CERTIFICATE OF TYPE APPROVAL

발 급 번 호 : 제 - 호
Issunig No.:

증 서 번 호 : 제 - 호
Certificate No. :

| | | |
|--|---|---------------------------|
| 신청인
Applicant | 성명(법인명)
Name(Company) | |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Date of Birth(Registration No.) | |
| | 주소
Address | |
| 제조사
Manufacturer | 성명(법인명)
Name(Company) | |
| | 주소
Address | |
| 형식승인
대상물건
Particular of
Articles | 품명
Name of Articles | |
| | 규격
Size | |
| | 형식
Type | |
| 시험인증사항
Test Certificate
including Test
Report | 시험기관
Testing Laboratory | |
| | 합격증명서번호
Certificate No. | 증명서 발급일자
Date of Issue |
| 비 고
Remarks | | |

「어선법 시행규칙」 제59조제3항에 따라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under Article 59.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s Act and the provisions of SOLAS(COLREG, IMO Res., LSA Code)

년 월 일
Y M D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210mm×297mm[보존용지(1종) 220g/㎡]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19. 8. 20.>

검정신청서

(앞쪽)

| | |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검정요청일자 + 5일 | | | |
| 신 청 인 | 성명(법인명) | | 법인등록번호 | | | |
| | 주소
(전화번호) | | | | | |
| 제 조 자 | 성명(법인명) | | | | | |
| | 주소 | | | | | |
| 형식승인대상물건 | | | | | | |
| 형식승인증서번호,
형식승인일자 | 품 명 | 규 격 | 형 식 | 수 량 | 제조번호 | 제조일자 |
| | | | | | | |
| 검정요청일 | | | 검정장소 | | | |
| 비 고 | | | | | | |

「어선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기 위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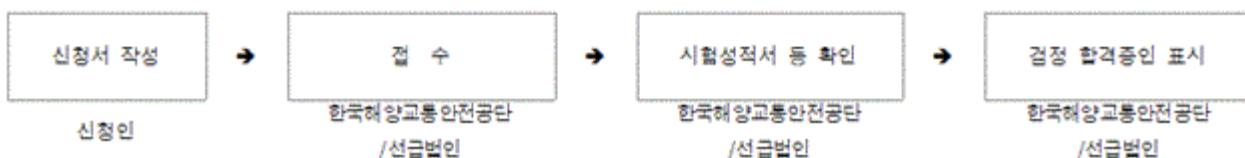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한 국 선 급 회 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없 음 | 수수료
대형 검사기관의
수수료 기준에 따름 |
|------|-----|-------------------------------|

유의사항

- ☐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한 형식승인대상물건에 대하여 검정을 받아야 합니다.
- ☐ 형식승인대상물건에 표시해야 할 사항(크기나 모양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형식승인 품명·형식 및 규격(규격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형식승인증서 번호와 형식승인 일자
 - 제조번호와 제조일자

처리절차



[별지 제52호 서식] 삭제 <2012.6.7>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

CERTIFICATE OF CHANGE OF TYPE APPROVAL CONTENTS

제 호

Certificate No.: _____

| | | |
|--|---|---------------------------|
| 신청인
Applicant | 성명(법인명)
Name(Company) | |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Date of Birth(Registration No.) | |
| | 주소
Address | |
| 제조사
Manufacturer | 성명(법인명)
Name(Company) | |
| | 주소
Address | |
| 형식승인
대상물건
Particular of
Articles | 품명
Name of Articles | |
| | 규격
Size | |
| | 형식
Type | |
| 시험인증사항
Test Certificate
including Test
Report | 시험기관
Testing Laboratory | |
| | 합격증명서번호
Certificate No. | 증명서 발급일자
Date of Issue |
| 변경사항
Content
Changed | 변경전
Before | 변경후
After |
| | | |

「어선법 시행규칙」 제59조의3제2항에 따라 이 승인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under Article 59-3.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s Act.

| | | |
|---|---|---|
| 년 | 월 | 일 |
| Y | M | D |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 어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의2서식] <개정 2025. 12. 19.>

정 부 24(www.gov.kr)에서 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25일 |
| 신청인 | 상호명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성 명
(대표자명) | 생년월일 | |
| | 주 소 | | |
| | 전화번호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홈페이지) | |
| <div> <div>시험을 하려는 항목</div> <div> <div>종전에 형식승인시험기관으
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경
우</div> <div> <div>[] 지정요건 변경</div> <div>[] 시험항목 변경</div> </div> </div> </div> | | | |
| 변경사유 | | | |
| 비 고 | | | |

「어선법 시행규칙」 제59조의5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 |
|-------|--|------------|
| 첨 부서류 | 1. 기관의 연혁, 설립 목적, 주요 기능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2. 「어선법」 제24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종사할 인원 및 그 자격을 적은 서류와 그 증빙서류(해당 시험업무에 종사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3.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국가표준기본법」 또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정·검정을 받은 기기를 포함합니다)의 목록, 사양서 및 교정·검정을 받은 기기의 관리계획서
4. 시험·검사기관 인정서(「어선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4호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장비이용계획서
가. 「어선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
1) 시설 또는 장비의 임차사유
2) 임차하려는 시설 또는 장비의 종류
3) 임차하려는 시설의 소재지 또는 장비의 제조자의 명칭 및 주요 기능에 관한 사항
나. 「어선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
1) 다른 시험기관에의 의뢰 사유
2) 의뢰하려는 시험항목
3) 의뢰하려는 다른 시험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6. 「어선법 시행규칙」 제59조의6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 인정서(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수수로
없 음 |
|-------|--|------------|

■ 어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의3서식] <신설 2018. 5. 1.>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서

CERTIFICATE OF TYPE-APPROVAL TESTING LABORATORY

발 급 번 호: 제 - 호
Issuing No.:

증 서 번 호 : 제 - 호
Certificate No. :

| | |
|---------------------------------------|---------------------------------------|
| 지정기관
Type-Approval
Testing Lab. | 상호명(법인명)
(Company) |
| | 대표자
(Name) |
|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Registration No.) |
| | 사업장의 주소
(Factory Address) |
| 시험항목
Testing Items | |
| | |
| | |
| | |
| | |
| 비 고
Remarks | |

「어선법 시행규칙」 제59조의5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laboratory is designated as Type-Approval Testing Laboratory in accordance with Article 59-5.2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s Act.

년 월 일
Y M D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210mm×297mm(백상지 150g/㎡)

지정기준 인정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
| | | | 5일 |
| 신청인 | 상호명
(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성명
(대표자명) | | 생년월일 |
| | 주소 | | |
| | 전화번호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홈페이지) | |
| 인정내용
(시험시설 또는 장비의 일부를 임차하
거나 시험항목 일부를 다른 시험기관
에 의뢰하는 내용) | | 의뢰(임차)
기관 | |
| | | 시험항목 | |
| | | 시험설비 | |
| | | 시험능력 | |
| | | 기타 | |
| 신청사유 | | | |

「어선법 시행규칙」 제59조의6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인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어선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 임차하려는 시설 또는 장비가 해당 형식승인시험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어선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 의뢰하려는 시험기관이 해당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210mm×297mm(백상지 80g/㎡)

■ 어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의 5서식] <신설 2018. 5. 1.>

지정기준 인정서

CERTIFICATE OF EXTERNAL COMMISSIONS OF
TYPE-APPROVAL TESTING LABORATORY

제 호 :

Certificate No. :

| | | | |
|------------------|---|--|-------------------------------------|
| 신청인
Applicant | 상호명(법인명)
Company |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Registration No. |
| | 대표자
Name | | 생년월일
Date of Birth |
| | 주 소
Address | | |
| 승인사항
Approval | 설비 임차 또는
의뢰 시험기관
Testing Lab. | | |
| | 시험기관 주소
Testing Lab.
Address | | |
| | 시험항목 등
Testing Items | | |
| | 의뢰시험 내용
또는 이용 설비
Contents(Equip.) | | |
| 비 고
Remarks | | | |

「어선법 시행규칙」 제59조의6제2항에 따라 지정기준 인정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of external commissions of Type-Approval Testing Laboratory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59-6.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s Act.

년 월 일
Y M D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210mm×297mm(백상지 150g/㎡)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개정 2018. 5. 1.>

지정사업장 지정(변경)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25일 | |
| 신 청 인 | 성 명 국문
(법인명) | 전 화 | | |
| | 영문 | 팩 스 | | |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홈페이지 | | |
| | 주 소 국문 | | | |
| | 영문 | | | |
| 사 업 장
주 소 | | | | |
| 지정대상 | 형식승인증서번호 | 품 명 | 규 격 | 형 식 |
| | | | | |
| 비 고 | | | | |

「어선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제1항 및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건조, []제조 []정비)사업장의 지정(변경승인)을 받기 위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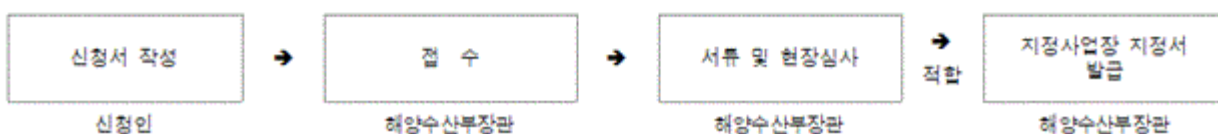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
|------|--|--|
| 첨부서류 | <p>1. 지정사업장 지정을 신청할 경우</p> <p>가. 사업장의 연혁·조직 및 업무 분장의 개요</p> <p>나. 「어선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p> <p>다. 지정대상물건의 건조·제조에 관한 규정(지정건조사업장 또는 지정제조사업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로 한정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정대상물건의 구조 2) 지정대상물건의 성능 및 주된 재료 3) 건조·제조과정 4) 품질관리 5) 시험과 검사체계 <p>라. 지정대상물건의 정비에 관한 규정(지정정비사업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로 한정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해 및 조립방법과 사용공구 2) 부품 또는 부재별 점검 및 정비방법 3) 부품 또는 부재별 사용시간과 손상정도 등에 따른 사용한도의 판정기준, 4) 조립 후의 조정방법 <p>마. 지정대상물건에 대한 자체검사기준</p> <p>2. 지정사업장으로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p> <p>가.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p> <p>나. 지정사업장 지정서</p> | <p>수수료</p> <p>「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20 제3호에 따른</p> |
|------|--|--|

처리절차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18. 5. 1.>

지정사업장 지정서

CERTIFICATE OF RECOGNIZED MANUFACTURING(MAINTENANCE) FACTORY

발 급 번 호: 제 - 호
Issuing No.: 제 - 호증 서 번 호: 제 - 호
Certificate No.: 제 - 호

| | |
|-------|---|
| 사 업 자 | 성명(법인명)
Name(Company) |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Date of Birth(Registration No.) |
| | 주소
Address |

사업장의 주소
Factory Address지정대상물건
Particular of Articles

| 형식승인증서번호
Type Approval Certificate No. | 품 명
Name of Articles | 규 격
Size | 형 식
Type |
|---|-------------------------|-------------|-------------|
| | | | |

비 고
Remarks

「어선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이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factory above has been designated as a recognized manufacturing and maintenance factory in accordance with Article 60-2.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s Act.

| | | |
|---|---|---|
| 년 | 월 | 일 |
| Y | M | D |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19. 8. 20.>

확인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알록)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확인요청일자 + 5일 |
| 신 청 인 | 성명(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전화번호) | | |
| 사 업 장
주 소 | | | |
| 지정대상 | 형식승인증서번호, 지정사업장 지정 번호 및 일자 | | |
| | 품 명 | 수량 | |
| | 규격 | 건조·제조
(정비)번호 | |
| | 형식 | 건조·제조
(정비)일자 | |
| 확 인 | 요청일자
년 월 일 | 확인장소 | |
| 비 고 | | | |

「어선법 시행규칙」 제60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대상물건의 ([]건조, []제조 []정비)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한 국 선 급 회 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없 음 | 수수료
대형 검사기관의
수수료 기준에 따름 |
|------|-----|-------------------------------|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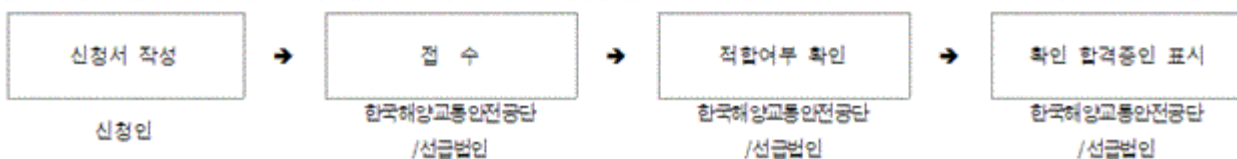
□ 확인대상

- 건조·제조·정비 확인대상 품목(「어선법 시행규칙」 제60조의4제1항을 참조하십시오)

□ 지정대상물건에 표시해야 할 사항(크기나 모양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지정사업장의 명칭, 지정번호 및 지정일자
- 지정 품명·형식 및 규격(규격이 있는 경우에만 표시합니다)
- 건조일자·제조일자 또는 정비일자
- 건조번호·제조번호 또는 정비번호

처리절차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 <개정 2018. 5. 1.>

자체검사 합격증서

CERTIFICATE OF SHIP-BUILDING (MANUFACTURING · MAINTENANCE) APPROVED USE

제 호
Certificate No. _____

| | | |
|---------------------------|--------------------------|---|
| 사업자 | 성명(법인명)
Name(Company)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Date of Birth
(Registration No.) |
| | 주소
Address | |
| 사업장 주소
Factory Address | | |

형식승인 대상물건의 내용
Particular of Articles

| 형식승인증서번호
Type Approval
Certificate No. | 품 명
Articles | 규 격
Size | 형 식
Type | 수 량
Quantity | 건조·제조(정비)번호
Manufacturer Serial No. | 비 고
Remarks |
|--|-----------------|-------------|-------------|-----------------|--|----------------|
| | | | | | | |

「어선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의4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정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under Article 27.1 of the Fishing Vessels Act and Article 60-4.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s Act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Y M D

지정사업장의 장
President of Designated Factory

직인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개정 2020. 9. 3.>

제한하중등 확인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25일 | | |
|---------------|----------------------------------|-------------|-------------|-----------------|----|
| 종류·위치
및 번호 | 하중시험을 할 때 붐의 각도
(지브크레인의 선회반경) | 시험하중
(톤) | 제한하중
(톤) | 제한각도
(제한반지름) | 비고 |
| | | | | | |

「어선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하역설비에 대한 제한하중 등의 확인을 받기 위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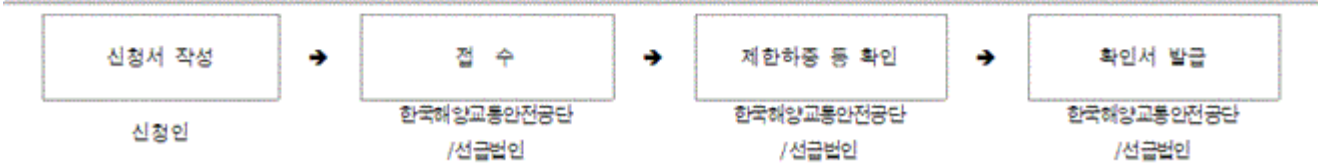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귀하
한 국 선 급 회 장

| | | |
|------|-----|-------------------------------|
| 첨부서류 | 없 음 | 수수료
대형 검사기관의
수수료 기준에 따름 |
|------|-----|-------------------------------|

처리절차



■ 어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개정 2020. 9. 3.>

제 호

제한하중등 확인증

| 어선의 명칭 | | 어선번호 | | | |
|---------------|----------------------------------|-------------|-------------|-----------------|-----|
| 종류·위치
및 번호 | 하중시험을 할 때 붐의 각도
(지브크레인의 선회반경) | 시험하중
(톤) | 제한하중
(톤) | 제한각도
(제한반지름) | 비 고 |
| | | | | | |

「어선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인 인 인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한국선급회장)

직인

하역설비검사기록부

| | |
|--------|--|
| 어선의 명칭 | |
| 어선번호 | |
| 선 적 항 | |

(2/3)

(1) 하역장치(크레인, 원치 및 호이스트는 제외합니다)의 검사 기록

[illegible]

(3/3)

(2) 하역장치(크레인, 윈치 및 호이스트)의 검사 기록

| 종류 및그위치
또는 번호 | 제한하중등
지정서번호 | 정기검사
연월일 | 선박검사원의
성명 | 중간검사
연월일 | 선박검사원의
성명 | 비 고 |
|------------------|----------------|-------------|--------------|-------------|--------------|-----|
| | | | | | | |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61호서식] <개정 2019. 8. 20.>

(앞쪽)

어선검사증서

FISHING VESSEL SURVEY CERTIFICATE

제 호
Certificate No. _____

| | | | |
|---|--|-------------------------|----------------------|
| 어선의 명칭
Name of Ship | | 어선번호
Official No. | |
| 선 질
Ship's Material | | 총 톤 수
Gross Tonnage | 톤
tons |
| 어업의 종류
Type of Fishery | | | |
| 추진기관
Main Engine | 기관
Type | [kW] Output [PS] | 대
Number of Units |
| 배의 길이
Ship's Length | 미터
m | 무선설비
Radio Equipment | |
| 최대승선인원
Max. Number of Allowable Persons on board | Total 명 (어선원: p (Crew: 명, 어선원 외의 자: p) Other Personnel: 명) | | |
| 항해와 관련한 조건
Conditions for Navigation | | | |
| 유효기간
Validity | This certificate is valid form 년 월 일부터 until 년 월 일까지 | | |

「어선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7.1 of the Fishing Vessels Act and Article 63.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s Act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Y M D

해양수산부장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한국선급회장)
 President of Korean Register of Shipping

직인

검 사 기 록
Survey Records

[illegible]

Remarks _____

(앞쪽)

어선검사증서 FISHING VESSEL SURVEY CERTIFICATE

제 호
Certificate No. _____

| | | | |
|--|--|-------------------------|----------------------|
| 어선의 명칭
Name of Ship | 어선번호
Official No. | | |
| 선 질
Ship's Material | 총 톤 수
Gross Tonnage | | 톤
tons |
| 어업의 종류
Type of Fishery | | | |
| 추진기관
Main Engine | 기관
Type | [kW] Output [PS] | 대
Number of Units |
| 배의 길이
Ship's Length | 미터
m | 무선설비
Radio Equipment | |
| 최대승선인원
Max. Number of Allowable
Persons on board | Total 명 (어선원 : 명, 어선원 외의 자 : 명)
p (Crew : p, Other Personnel : p) | | |
| 항해와 관련한 조건
Conditions for Navigation | | | |
| 유효기간
Validity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This certificate is valid form . . . until . . . | | |

「어선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7.1 of the Fishing Vessels Act and Article 63.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s Act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년 | 월 | 일 |
|---|---|---|
| Y | M | D |

해양수산부장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한국선급회장)
President of Korean Register of Shipping

직인

(위쪽)

| | |
|----------------------------|---|
| 만재출수선
의 위치
Load Line | 갑판선의 상면의 위치: 배의 길이의 중앙에 있어서 _____갑판의 선측 상면의 연장선과 외판의 외
면과의 교점으로부터 _____방향으로 _____밀리미터
The upper edge of the deck line from which these freeboards are measured is _____mm,
_____from the top of the deck at side |
| | 만재출수를 표시하는 수평선[하기만재출수선(S)·해수만재출수선 또는 만재출수선]의 상면의 위치 :
갑판선의 상면으로부터 하방으로 _____밀리미터
Summer Load Line(S): _____mm below from the upper edge of deck line |
| | 동기만재출수선(W)의 위치: S의 하방으로 _____밀리미터
Winter Load Line(W): _____mm below from Summer Load Line |
| | 동기북대서양만재출수선(WNA)의 위치: S의 하방으로 _____밀리미터
Winter North Atlantic Load Line(WNA): _____mm below from Summer Load Line |
| | 열대만재출수선(T)의 위치: S의 상방으로 _____밀리미터
Tropical Load Line(T): _____mm above from Summer Load Line |
| | 위의 각 만재출수선에 대응하는 담수만재출수선의 위치:
각 만재출수선 상방으로 _____밀리미터
Allowance for fresh water for all freeboards other than timber: _____mm |

「어선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
Endorsement to extend the Validity of the Certificate

| | | | |
|---------------------------------------|--|--------------------------------|--|
| 연장된 유효기간
Extended Date of Validity | 년 월 일까지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 . . | 검사기관(인)
Survey Organization | |
|---------------------------------------|--|--------------------------------|--|

검 사 기 록
Survey Records

| 차 기 검 사
Next Survey | | | 검사완료일
Date of Survey | 선박검사원의 성명
Name of surveyor | 검사기관(인)
Survey Organization |
|---------------------------|------------------------|----------------------|-------------------------|-------------------------------|--------------------------------|
| 검사기준일
Anniversary Date | 검사종류
Kind of survey | 검사사항
Survey Item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 고
Remarks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개정 2019. 8. 20.>

어선특별검사증서

FISHING VESSEL SPECIAL SURVEY CERTIFICATE

제 호
Certificate No. _____

| | | | |
|--|--|-------------------------|------------------------------|
| 어선의 명칭
Name of Ship | | 어선번호
Official No. | |
| 선 질
Ship's Material | | 총 톤 수
Gross Tonnage | 톤
tons |
| 어업의 종류
Type of Fishery | | | |
| 추진기관
Main Engine | 기관
Type | [kW]
Output | [PS]
대
Number of Units |
| 배의 길이
Ship's Length | 미터
m | 무선설비
Radio Equipment | |
| 최대승선인원
Max. Number of Allowable
Persons on board | Total 명 (어선원 : 명, 어선원 외의 자: 명)
p (Crew: p, Other Personnel: p) | | |
| 항해와 관련한 조건
Conditions for Navigation | | | |
| 유효기간
Validity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This certificate is valid form . . . until . . . | | |

「어선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7.1 of the Fishing Vessels Act and Article 63.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s Act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Y M D

해양수산부장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한국선급회장)
 President of Korean Register of Shipping

직인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 <개정 2019. 8. 20.>

임시항행검사증서

TEMPORARY NAVIGATION CERTIFICATE

제 호
Certificate No. _____

| | | | |
|--|---|---------------------------|---|
| 어선의 명칭
Name of Ship | | 어선번호
Official No. | |
| 선 질
Ship's Material | 톤
tons | 선 질
Ship's Material | |
| 총 톤 수
Gross Tonnage | | 어업의 종류
Type of Fishery | |
| 배의 길이
Ship's Length | 미터
m | | |
| 최대승선인원
Max. Number of Allowable
Persons on board | Total | 명 (어선원:
p (Crew: | 명, 어선원 외의 자:
p, Other Personnel: p) 명) |
| 항 로
Navigation Route | | | |
| 항해와 관련한 조건
Conditions for Navigation | | | |
| 유효기간
Validity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This certificate is valid form . . . until . . . | | |

「어선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7.1 of the Fishing Vessels Act and Article 63.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s Act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Y M D

해양수산부장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한국선급회장)
 President of Korean Register of Shipping

직인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 <개정 2019. 8. 20.>

건조검사증서

SHIP-BUILDING SURVEY CERTIFICATE

제 호
Certificate No. _____

| | | | | | |
|------------------------------|--------------------------|-------------------------------|-------------------------|-----------------|-----------------------|
| 건조자
Builder | 성명(법인명)
Name(Company) | | | | |
| | 주 소
Address | | | | |
| 어선의 명칭
Name of Ship | | 건조번호
Buildingl No. | | | |
| 선 적 항
Port of Registry | | 선 질
Ship's Material | | | |
| 어업의 종류
Type of Fishery | | 계획총톤수
Desing Gross Tonnage | | 톤
tons | |
| 주요치수
Principal Dimensions | | 길이:
Length: | 미터,
m, | 너비:
Breadth: | 미터,
m, |
| 추진기관
Main Engine | | 기관
Type | [킬로와트(kW)]
Output | | [마력(PS)]
대
Nos. |
| 배의 길이
Ship's Length | | 미터
m | 무선설비
Radio Equipment | | |
| 비 고
Remarks | | | | | |

「어선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7.1 of the Fishing Vessels Act and Article 63.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s Act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Y M D

해양수산부장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한국선급회장)
President of Korean Register of Shipping

직인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66호서식] <개정 2019. 8. 20.>

예비검사증서

CERTIFICATE OF ARTICLES FOR SHIP USE

제 호
Certificate No. _____

| | | |
|------------------|---|----------------------------------|
| 신청인
Applicant | 성명(법인명)
Name(Company)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Registration No. |
| | 주 소
Address

(전화번호(Tel.): _____) | |

어선용품의 내용 Particular of Articles

| 품 명
Name of Articles | 규 격
Size | 형 식
Type | 수 량
Quantity | 제조번호
Manufacturer Serial No. | 검사번호
Inspection No. |
|-------------------------|-------------|-------------|-----------------|---------------------------------|------------------------|
| | | | | | |
| 비 고
Remarks | | | | | |

「어선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7.1 of the Fishing Vessels Act and Article 63.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s Act and the provisions of ([] IMO Res. [] SOLAS [] LSA Code [] COLREG)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Y M D

해양수산부장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한국선급회장)
President of Korean Register of Shipping

직인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 <개정 2019. 8. 20.>

검정증서

CERTIFICATE OF SHIP EQUIPMENT INSPECTION FOR SHIP USE OF APPROVED TYPE

제 호
Certificate No. _____

| | |
|------------------|----------------------------------|
| 신청인
Applicant | 성명(법인명)
Name(Company) |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Registration No. |
| | 주소
Address |

형식승인대상물건의 내용
Particular of Articles

| 형식승인증서번호
Type Approval
Certificate No. | 품 명
Name of Articles | 규 격
Size | 형 식
Type | 수 량
Quantity | 제조번호
Manufacturer Serial No. | 제조일자
Date of Manufacture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 고
Remarks | | | | | | |

「어선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7.1 of the Fishing Vessels Act and Article 63.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s Act and the provisions of ([] IMO Res. [] SOLAS [] LSA Code [] COLREG)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 | | |
|---|---|---|
| 년 | 월 | 일 |
| Y | M | D |

해양수산부장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한국선급회장)
President of Korean Register of Shipping

직인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개정 2019. 8. 20.>

건조(제조·정비)확인증**CERTIFICATE OF SHIP-BUILDING(MANUFACTURING·MAINTENANCE) VERIFICATION**제 호
Certificate No. _____

| | |
|---------------------------|----------------------------------|
| 사업자 | 성명(법인명)
Name(Company) |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Registration No. |
| | 주소
Address |
| 사업장 주소
Factory Address | |

지정대상물건의 내용
Particular of Articles

| 형식승인증서번호
Type Approval
Certificate No. | 품 명
Name of Articles | 규 격
Size | 형 식
Type | 수 량
Quantity | 제조(정비)번호
Manufacturer Serial No | 비 고
Remarks |
|--|-------------------------|-------------|-------------|-----------------|------------------------------------|----------------|
| | | | | | | |

「어선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under Article 27.1 of the Fishing Vessels Act and Article 63.1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s Act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 | | |
|---|---|---|
| 년 | 월 | 일 |
| Y | M | D |

해양수산부장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한국선급회장)
President of Korean Register of Shipping

직인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 <개정 2019. 8. 20.>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 | | | | | | | | |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 2일 | | (앞쪽) | |
| 신 청 인 | 성명(법인명) | | | | | | | | |
| | 주소 | | | | | | | | |
| (전화번호) | | | | | | | | | |
| 어 선 | 어선번호 | | | 어선의 명칭 | | | | | |
| | 증서유효기간 | | | 년 | 월 | 일부터 | 년 | 월 | 일까지 |
| 연장요청
기 간 | | | | 년 | 월 | 일부터 | 년 | 월 | 일까지 |
| 연장사유 | | | | | | | | | |

「어선법 시행규칙」 제67제2항에 따라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기 위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귀하
한 국 선 급 회 장

| | | |
|------|--|-------------------------------|
| 첨부서류 | 1. 어선이 검사받을 장소에 있지 않아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어선의 현재의 위치를 나타내는 서류
2. 새로운 어선검사증서를 어선에 갖추어 둘 수 없는 경우: 현재 갖추고 있는 어선검사증서 | 수수료
대형 검사기관의
수수료 기준에 따름 |
|------|--|-------------------------------|

유의사항

□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 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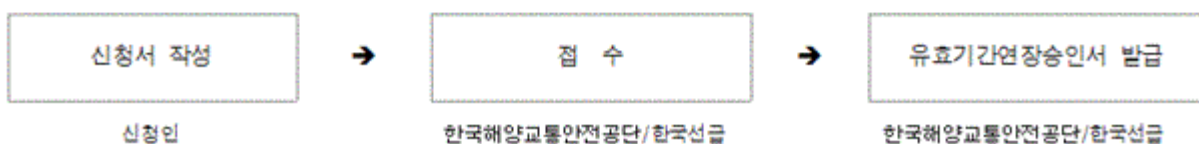
□ 어선검사증서 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

- 해당 어선이 정기검사를 받을 장소에 있지 않아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어선이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새로운 어선검사증서를 즉시 발급할 수 없거나 어선에 갖추어 둘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개월의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유의사항

- 연장된 기간 내에 해당 어선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장소에 도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처리절차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70호서식] <개정 2019. 8. 20.>

어선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승인서

| | | | |
|---------|---|--------|--|
| 제 | 호 | | |
| 어선번호 | | 어선의 명칭 | |
| 선 적 항 | | 선 질 | |
| 총 톤 수 | 톤 | 어업의 용도 | |
| 현증서유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 연장된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 연장조건 | 연장된 기간 내에 해당 어선이 검사받을 장소에 도착한 경우에는 검사일 후의 기간에 대한 연장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 | |

「어선법 시행규칙」 제6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승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한국선급회장)

직인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개정 2020. 9. 3.>

재검사등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4일 |
| 신 청 인 | 성명(법인명) | | |
| | 주소
(전화번호) | | |
| 재검사등의
종류 | ☐ 건조(별도건조)검사 ☐ 정기검사 ☐ 중간검사
☐ 특별검사 ☐ 임시검사 ☐ 임시항행검사
☐ 형식승인대상물건의 검정 및 확인 ☐ 예비검사
☐ 국제협약검사 ☐ 도면승인 ☐ 선체두께측정
☐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 ☐ 총톤수 측정·재측정 | | |
| 전회검사기관 | | 검사완료일자 | |
| 어 선 | 어선의 명칭 | 어선번호 또는 제조번호 | |
| | 선 적 항 | 총 톤 수 | |
| 형식승인대
상물건 | 품 명 | 규격·형식 | |
| | 제조번호 | 검사번호 | |
| 비 고 | | | |

(위쪽)

유의사항

☐ 어선의 검사 등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유서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검사 등을 신청한 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는 관계 부분의 원상을 변경할 수 없으며, 관계 부분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에는 재검사 등을 하지 않습니다.

■ 어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 71호의 2서식] <개정 2019. 8. 20.>

어선거래정보이용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란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
| 신청인 | 상호(명칭) | |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청사항 | 이용목적 | | |
| | 근거법령(해당하는 경우만 적습니다) | | |
| | 자료의 범위 | [] 개발된 자료 [] 가공되는 자료 | |
| | | [] 전국 [] 시·도 [] 시·군·구 | |
| 자료제공방식 | | | |
| 자료관리 | 보관기관 | | |
| | 안전관리대책 | | |

「어선법」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신청사항의 설명자료 1부. | 수수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릅니다. |
|------|----------------|--|

■ 어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 71호의 3서식] <신설 2017. 6. 28.>

어선거래정보이용대장

| 접수
번호 | 접수
일자 | 신청인 | | 사용목적 | 신청
건수 | 전산정보처리조직
작업의뢰일 | 처리결과
통보일 | 처리
건수 | 수수료 | 비고 |
|----------|----------|-----|----|------|----------|-------------------|-------------|----------|-----|----|
| | | 성명 | 주소 | | | | | | | |
| | | | | | | | | | | |

297mm × 210mm [백상지 (80g/m²)]

비고 (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 기재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 어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4서식] <신설 2017. 6. 28.>

어선중개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란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7일 |
| 신청인 | 상호(명칭) | |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법인등록번호(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중개사무소 | 소재지 | | |
| | 전화번호 | | |
| 사업개시
예정일 | | | |
| 구 분 | 당 초 | 변 경 | |
| 변경사항 | | | |
| 변경사유 | | | |

「어선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4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동·서·남해 어업관리단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음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뒤쪽)

| | |
|-----------------------|---|
| <p>신청인
제출서류</p> | <p>1. 등록하려는 경우
 가. 「어선법」 제31조의2제2호에 따른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중개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받은 교육만 해당합니다)
 나. 「어선법」 제31조의9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 「어선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라. 반영할판 사진(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사진만 해당합니다)</p> <p>2. 변경등록하려는 경우
 가. 어선중개업 등록증
 나. 등록한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p> |
| <p>담당공무원
확인사항</p> | <p>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하며,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중개사무소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p> |

유의사항

1. 별책 규정

가. 어선종개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어선종개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선종개업을 신청하거나 또는 어선종개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어선중개업의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하는 경우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선법」 제31조의2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나. 「어선법」 제31조의2 각 호에 따른 어선종개업의 등록요건에 미달된 경우

다. 「어선법」 제31조의3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어선법」 제31조의3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으로 교체 임명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라. 「어선법」 제31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 또는 발급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 사본을 3년 미만으로 보존하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마. 「어선법」 제31조의8제1항에 따른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그 밖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물 이
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바. 「어선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사.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3. 등록 결격사유

가, 미성년자

나.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합니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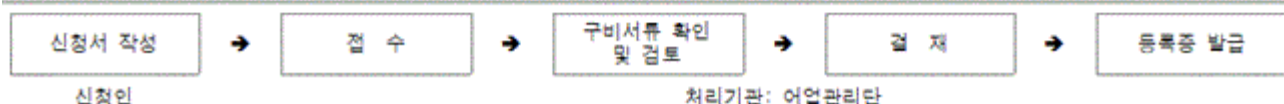
바. 「어선법」 제31조의4에 따라 어선종개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사, 대표자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든 모든

4. 그 밤의 유의사항

- 등록사항의 변경이 생긴 경우에도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어업관리단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 어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 71호의 5서식] <신설 2017. 6. 28.>

어선중개업 등록증

사진
(3.5cm×4.5cm)
(법인인 경우 대표자)

| | | | |
|------------------------|--------------|------------------|---------------|
| 어선중개업사무소 상호
(명칭) | | 중개업 종별 | [] 법인 [] 개인 |
| 성명(법인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어선중개업 등록증 번호 | | 등 록 연월일 | |
| 법인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 소속중개업자
성명 | 생년월일 | |
| | 소속중개업자
성명 | 생년월일 | |
| | 소속중개업자
성명 | 생년월일 | |
| | 소속중개업자
성명 | 생년월일 | |
| | 소속중개업자
성명 | 생년월일 | |
| 어선중개업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

「어선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4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선중개업을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동·서·남해 어업관리단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어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6서식] <신설 2017. 6. 28.>

어선중개업 등록대장

(앞쪽)

| | | | | | |
|---------------------|--------------|------------------|--|------------------|---------------|
| 대장등록번호 | | 등록 연월일 | | 중개업사무소
상호(명칭) | |
| 중개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 중개업 종별 | [] 법인 [] 개인 |
| 등록자 | 성명
(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어선중개업
등록증 번호 | |
| | 주소(체류지) | | | | |
| 법인 | 대표자 성명 | | | 생년월일 | |
| | 소속중개업자
성명 | | | 생년월일 | |
| | 소속중개업자
성명 | | | 생년월일 | |
| | 소속중개업자
성명 | | | 생년월일 | |
| | 소속중개업자
성명 | | | 생년월일 | |
| | 소속중개업자
성명 | | | 생년월일 | |

297mm × 210mm [백상지(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 기재할 수 있습니다.

(뒤쪽)

(손해배상책임 보증)

| 보증의 구분 및 보장기관 | 보장금액 | 보장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무소 변경사항)

| 연 월 일 | 사무소 명칭 변경 | 연 월 일 | 사무소 소재지 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처분 사항)

| 연 월 일 | 처 분 내 용 | 연 월 일 | 처 분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 × 210mm [백상지 (80g/㎡)]

■ 어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서식] <개정 2023. 12. 18.>

[]휴업 []폐업 []재개업 []휴업연장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란에는 해당되는 곳에 v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7일 |
| 신고인 | 상호(명칭) | | |
|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 대표자 성명(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생년월일 | |
| 중개사무소 | 소재지 | | |
| | 전화번호 | | |
| 신고사유 | | | |
| 휴업·폐업
·연장기간 | | | |
| 재개업 개시
일자 | | | |

「어선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동·서·남해 어업관리단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어선중개업 등록증
2. 「어선법」 제31조의9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재개업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 | | | | | | | |
|---------------|---|-----|---|-----------------|---|-----|---|-----|
| 신고서 작성
신고인 | → | 접 수 | →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 | 결 재 | → | 통 보 |
| 처리기관: 어업관리단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72호서식] <개정 2013.3.24>

어선결함신고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 신 고 자 | 성명(법인명) | | |
| | 주소
(전화번호) | | |
| 어선내역 | 어선의 명칭 | 선적항 | |
| | 선장 | 어선회사 | |
| 결함내용 | | | |

「어선법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에 따라 위의 어선에 대한 결함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 80g/㎡]

[illegible]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 75호서식] <개정 2025. 12. 26.>

출항정지명령서

| | | | |
|------------------|---|--------|-------|
| 제 | 호 | | |
| 어선의 명칭 | | 선 장 명 | |
| 어선번호 | | 국 적 | |
| 총 톤 수 | 톤 | 어업의 종류 | |
| 입항일자 | 년 월 일 | 출항예정일자 | 년 월 일 |
| 출항정지사유 | | | |
| 출항정지기간
및 해제조건 | | | |
| 비 고 | 출항정지 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출항할 수 있으니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해당 선박검사원
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어선법 시행규칙」 제7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항정지명령서를 발급합니다.

이 명령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76호서식] <개정 2020. 9. 3.>

증서등 재발급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 주 소

(전화번호) | | |
| 어선
내역 | 어선번호 | | |
| | 어선의 명칭 | 총 톤 수 | 톤 |
| | 진수연월일
년 월 일 | 선체재질 | []강 []목
[]강화플라스틱(FRP)
[]그 밖의 재질() |
| | 선 적 항 | | |
| 신청
내용 | 증 서 명 | | |
| | 증서번호 | 제 호 | 교부일자
년 월 일 |
| | 신청사유 | | |
| | 잃어버린경위 | | |

「어선법」 제18조,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어업관리단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한 국 선 급 회 장

| | | |
|------|---|-----------------------------------|
| 구비서류 | 1. 잃어 못쓰게 된 경우: 해당 증서 등
2.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증서 등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조례 또는 대형검사기관
수수료 기준에 따름 |
|------|---|-----------------------------------|

유의사항

- 제 출 처: 해양수산부, 시·군·구, 영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
- 재발급하는 증서의 종류
 -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서·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서·어선건조(건조발주·개조·개조발주)허가사항변경허가서,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재확충량톤수증서,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어선검사증서, 어선특별검사증서, 임시항행검사증서, 건조검사증서, 예비검사증서, 검정증서, 건조(제조·정비)확인증, 별도건조검사증서, 항장식 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 형식승인증서,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 지정사업장 지정서,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승인서, 어선종개업 등록증, 출항정지명령서
- 재발급 받으려는 해당 증서의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잃어서 못쓰게 된 경우 또는 잃어버린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해당증서를 발급한 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국제선박등록법

[시행 2020. 1. 16.] [법률 제16279호, 2019. 1. 15.,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051 - 773 - 5725, 5723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선박의 등록과 국제선박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운산업(海運産業)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선박”이란 국제항행(國際航行)을 하는 상선(商船)으로서 제4조에 따라 국제선박등록부에 등록된 선박을 말한다.
2. “선원”이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국제선박에서 근로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3. “외항운송사업자”란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또는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9. 1. 15.>

[전문개정 2009. 2. 6.]

제3조(등록대상 선박) ①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 한다. 다만, 국유·공유 선박과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은 제외한다.

<개정 2015. 3. 27.>

1.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한 선박
2.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사(商事) 법인이 소유한 선박
3.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제2호 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을 말한다)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한 선박
4. 외항운송사업자 또는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가 대한민국의 국적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賃借)한 외국선박 중 외항운송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

② 제1항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의 규모, 선령(船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4조(등록절차) ① 국제선박으로 등록하려는 등록대상 선박의 소유자, 외항운송사업자 또는 선박대여업자(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등은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전에 「선박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선박을 선박원부(船舶原簿)에 등록하고 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3. 2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선박이 제3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대상이 되는 선박인지를 확인한 후, 등록대상인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국제선박등록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국제선박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국제선박의 선박소유자등은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4조의2(국제선박의 운항)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국제선박은 국내항과 외국항 간 또는 외국항 간에만 운항하여야 한다. 다만, 「해운법」 제25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국내항 간 운항이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2. 6.]

제5조(외국인 선원의 승무) ① 선박소유자등은 국제선박에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증명서를 가진 외국인 선원을 승무(乘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선원을 승무하게 하는 경우 그 승무의 기준 및 범위는 선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연합단체(이하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라 한다), 선박소유자등이 설립한 외항운송사업 관련 협회(이하 “외항운송사업자협회”라 한다) 등 이해당사자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6조(외국인선원의 근로계약 등) ①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외항운송사업자협회는 국제선박에 승무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② 선박소유자등이 국제선박에 승무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그 외국인 선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그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7조 삭제 <2015. 3. 27.>

제8조 삭제 <2019. 1. 15.>

제8조의2 삭제 <2019. 1. 15.>

제9조(국제선박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국제선박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감면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제선박에 승무하는 한국인 선원을 안정적으로 고용하기 위하여 선원능력개발 지원사업 등 노사가 합의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제10조(등록의 말소) ① 국제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선박소유자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국제선박의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제3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선박이 멸실(滅失), 침몰 또는 해체된 경우
3. 선박의 존재 여부가 3개월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제선박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선박소유자등이 제1항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선박소유자등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것을 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1. 선박소유자등이 등록의 말소를 신청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선박의 등록을 한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2. 6.]

제11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국제선박의 등록을 말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11조의2(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12조(벌칙) ① 삭제 <2019. 1. 15.>

② 삭제 <2019. 1. 15.>

③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제협약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외국인 선원을 국제선박에서 승무하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3. 3. 23., 2015. 3. 27.>

[전문개정 2009. 2. 6.]

제1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의2를 위반하여 국제선박을 운항한 자
3.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단체협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② 삭제 <2015. 3. 27.>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13. 3. 23., 2015. 3. 27.>
[전문개정 2009. 2. 6.]

부칙 <제5365호, 1997. 8. 22.>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40호, 2006. 10.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 、 <생략> 、 、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34> 까지 생략

<635> 국제선박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3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전단·후단, 제11조 및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8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의2 및 제12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5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3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441호, 2009. 2. 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2>까지 생략

<563> 국제선박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3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제1항·제2항 및 제13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56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264호, 2015. 3.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금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손실보상금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279호, 2019. 1. 15.>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제선박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8조 및 제8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시행 2020. 1. 16.] [대통령령 제30341호, 2020. 1. 7.,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051 - 773 - 5725, 5723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선박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6. 4.]

제2조(등록대상 선박) 「국제선박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은 국제총톤수 500톤 이상이면서 선령(船齡)이 20년 이하인 선박으로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급법인이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급에 등록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협약증서를 갖춘 선박은 선령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4.]

제3조 삭제 <2020. 1. 7.>

제4조 삭제 <2020. 1. 7.>

제5조 삭제 <2020. 1. 7.>

제6조 삭제 <2020. 1. 7.>

제7조 삭제 <2020. 1. 7.>

제8조 삭제 <2020. 1. 7.>

제8조의2 삭제 <2020. 1. 7.>

제8조의3

[종전 제8조의3은 제10조로 이동 <2015. 9. 8.>]

제9조 삭제 <2020. 1. 7.>

제10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2015. 9. 8.>

1. 법 제4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삭제 <2020. 1. 7.>
3. 삭제 <2020. 1. 7.>

4. 법 제10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말소

5. 법 제11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

6.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중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전문개정 2009. 6. 4.]

[제8조의3에서 이동 <2015. 9. 8.>]

부칙 <제15679호, 1998. 2.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12호, 2004. 3. 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92호, 2007. 4. 4.>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22호, 2008. 2. 29.>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2[^] 까지 생략

2&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제3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항,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6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제2항, 제8조의2제1항제6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9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8조의2제3항제1호 중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2*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1524호,2009. 6. 4.>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77호,2009. 12.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43호,2013. 3. 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8>까지 생략

<109>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제3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제2항, 제8조의2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10>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5985호,2015. 1. 6.>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⑬부터 3)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6515호,2015. 9.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이 있거나 또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8조의3에 따른다.

1. 법 제4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2. 법 제10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말소 신청
3. 법 제11조에 따른 청문의 사유
4.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사유

부칙 <제30341호,2020. 1. 7.>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13.] [해양수산부령 제807호, 2026. 7. 13.,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051 - 773 - 5725, 57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선박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6. 24.]

제2조(선령기준 적용 제외)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단서에 따라 선령(船齡)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국제선급연합회의 정회원인 선급(船級)에 등록된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증서를 갖추고 있는 선박으로 한다.

1. 국제만재흡수증서
2.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
3. 여객선안전증서(여객선인 경우만 해당한다)
4. 화물선안전무선증서, 화물선안전구조증서, 화물선안전설비증서(화물선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액화가스산적운송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위험화학품산적운송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 6. 24.]

제3조(국제선박의 등록신청 등) ① 「국제선박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하려는 등록대상 선박의 소유자, 외항운송사업자 또는 선박대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선박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 2013. 3. 24., 2015. 1. 8., 2015. 9. 16., 2017. 1. 2.>

1. 삭제<2009. 7. 1.>
2. 국제톤수증서 사본
3. 삭제<2009. 7. 1.>
4. 삭제<2009. 7. 1.>
5.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제협약증서 사본(선령이 20년을 초과하는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급법인 또는 제2조에 따른 선급이 발행한 선급증서 사본(선령이 20년을 초과하는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7. 등록신청 선박의 국제항행(國際航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운항선박 명세서 또는 「해운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

8.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하 “단체협약적용확인서”라 한다) 사본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선박이 법 제3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대상이 되는 선박인지를 확인한 후 등록대상 선박이면 국제선박등록부에 등록한 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국제선박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4., 2015. 1. 8., 2015. 9. 16.>

③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국제선박의 선박소유자들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제선박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1., 2013. 3. 24., 2015. 1. 8., 2015. 9. 16., 2017. 1. 2.>

1. 국제선박의 운항사업자가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변경된 운항사업자의 운항선박 명세서 사본 또는 「해운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나. 단체협약적용확인서 사본

2. 삭제<2009. 7. 1.>

3. 국제총톤수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국제톤수증서 사본

4. 등록 선급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선급증서 사본

[전문개정 2009. 6. 24.]

제4조 삭제 <2020. 1. 16.>

제5조 삭제 <2020. 1. 16.>

제6조 삭제 <2020. 1. 16.>

제7조 삭제 <2026. 7. 13.>

부칙 <제54호, 1998. 4.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3호, 2007. 4. 4.>

이 규칙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호, 2008. 3. 14.>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호, 2008. 12. 31.>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 해양수산부장관 ” 을 각각 “ 국토해양부장관 ” 으로 한다.

⑤ 부터 2@ 까지 생략

부칙 <제110호, 2009. 3. 26.>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호, 2009. 6. 24.>

이 규칙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호, 2009. 7. 1.>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비고란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호, 2013. 3. 24.>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서명란 및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서명란 중 “ 국토해양부장관 ” 을 각각 “ 해양수산부장관 ” 으로 한다.

제4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④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84호, 2014. 6. 2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호, 2014. 12. 31.> (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호, 2015. 1. 8.>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②부터 1(까지 생략

부칙 <제159호, 2015. 9. 16.>

이 규칙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호, 2017. 1. 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85호, 2020. 1. 16.>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807호, 2026. 7. 13.>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9.16.>

국제선박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3일 |
|------|------|---------|

| | | |
|-----|--------|---------|
| 신청인 | 상호(명칭) | 대표자(성명)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
| 신청내용 | 선박명 | 선적항(국적) |
| | 국제총톤수 | 진수일 |
| | 등록선급명 | |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제선박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
|------------------|--|-----------|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1. 국제총톤수증서 사본
2.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제협약증서 사본(선령이 20년을 초과하는 선박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급법인 또는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선급이 발행한 선급증서 사본(선령이 20년을 초과하는 선박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등록신청 선박의 국제항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운항선박명세서 사본
5. 「국제선박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수수료
없음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선박국적증서(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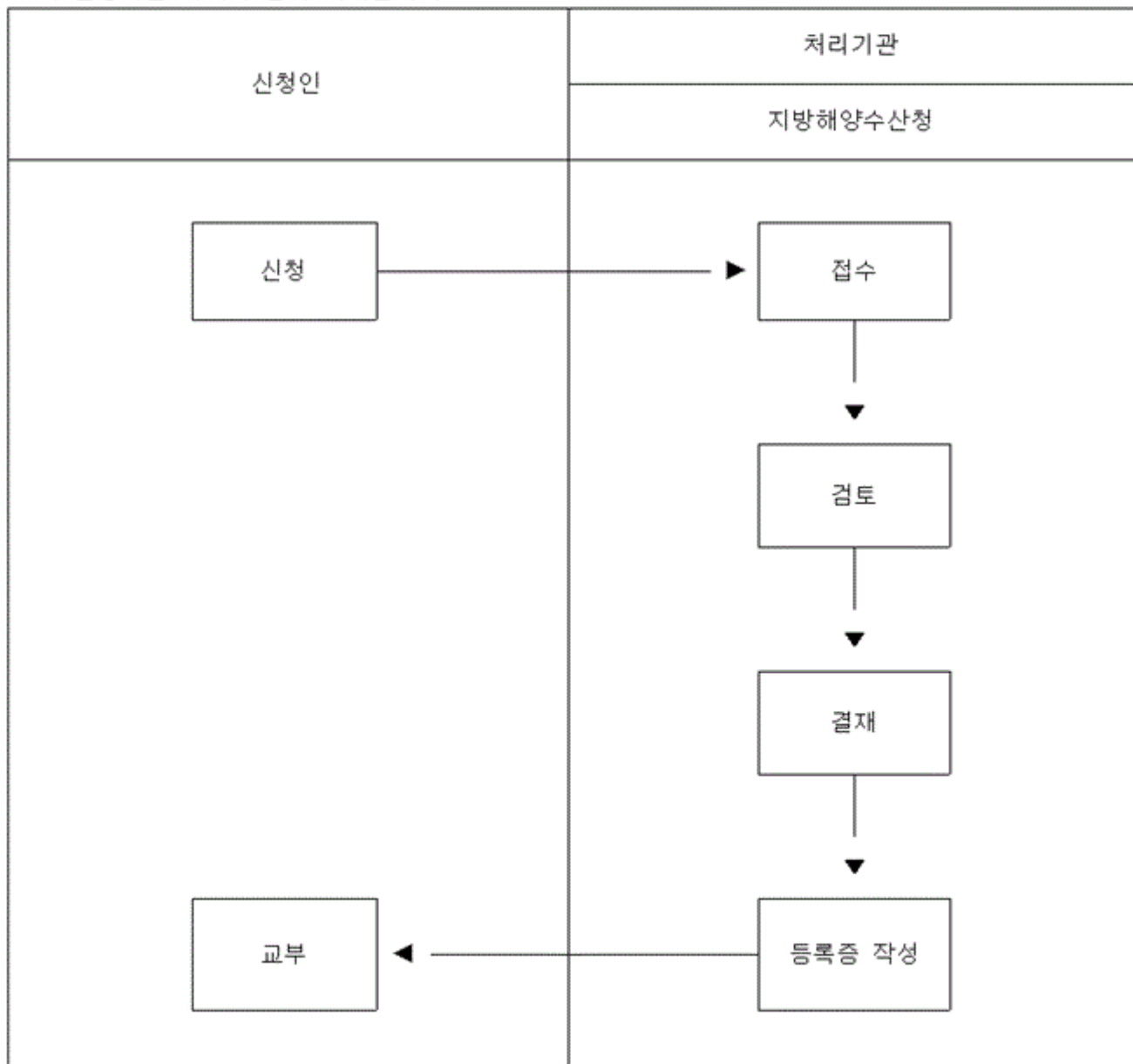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9.16.>

| | | | |
|---|--|--------|--|
| 등록번호 제 호 | | | |
| 국제선박등록증 | | | |
| 선박 번호 | | | |
| 선박명 | | | |
| 선적항(국적) | | | |
| 국제총톤수 | | 재화중량톤수 | |
| 등록 선급명 | | | |
| 진수일 | | | |
| 조선소 | | | |
| 선박소유자 | | | |
| 사업자명 | | | |
| 선박임차인 | | | |
| 임차기간 | | | |
| <p>「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제선박등록증을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지방해양수산청장 인</p> | | | |

210mm×297mm[일반용지(60g/㎡)]

■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9.16.>

국제선박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일 |
| 신청인 | 상호(명칭) | 대표자(성명) |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국제선박 등록번호 | | 선박명 |
| | 변경 사항 | 변경 전 | |
| | | 변경 후 | |
| | 변경 사유 | | |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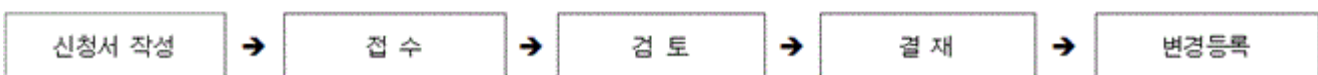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국제선박의 운항사업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운항사업자의 운항선박명세서 사본
및 단체협약적용확인서 사본
2. 국제총톤수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국제톤수증서 사본
3. 등록 선급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선급증서 사본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신청인

처 리 기 관 : 지방해양수산청

■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20. 1. 16.>

■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20. 1. 16.>

선원법규

1. 선원법
2. 선원법 시행령
3. 선원법 시행규칙
4.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5. 선박직원법
6. 선박직원법 시행령
7.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선원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054호, 2025. 9. 16.,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051 - 773 - 57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선내(船內)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2016. 12. 27., 2017. 4. 18., 2020. 2. 18.>

1. “선원”이란 이 법이 적용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선박소유자”란 선주, 선주로부터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임을 위탁받고 이 법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권리 및 책임과 의무를 인수하기로 동의한 선박관리업자, 대리인, 선체용선자(船體傭船者) 등을 말한다.
3. “선장”이란 해원(海員)을 지휘·감독하며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선원을 말한다.
4. “해원”이란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장이 아닌 선원을 말한다.
5. “직원”이란 「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전자기관사, 통신장, 통신사, 운항장 및 운항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원을 말한다.
6. “부원”(部員)이란 직원이 아닌 해원을 말한다.
- 6의2. “유능부원”이란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항해당직을 담당하는 부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부원을 말한다.
7. “예비원”이란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으로서 현재 승무(乘務) 중이 아닌 선원을 말한다.
8. “항해선”이란 내해,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내의 수역 또는 이에 근접한 수역 등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만을 항해하는 선박 외의 선박을 말한다.
9. “선원근로계약”이란 선원은 승선(乘船)하여 선박소유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선박소유자는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10. “임금”이란 선박소유자가 근로의 대가로 선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모든 금전을 말한다.
11. “통상임금”이란 선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일정한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都給金額)을 말

한다.

12. “승선평균임금”이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승선기간(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로 한다)에 그 선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승선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승선평균임금으로 본다.
13. “월 고정급”이란 어선소유자가 어선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14. “생산수당”이란 어선소유자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 월 고정급 외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획금액이나 어획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5. “비율급”(比率給)이란 어선소유자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어획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분배방법에 따라 배정한 금액을 말한다.
16. “근로시간”이란 선박을 위하여 선원이 근로하도록 요구되는 시간을 말한다.
17. “휴식시간”이란 근로시간 외의 시간(근로 중 잠시 쉬는 시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8. “해양항만관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19. “선원신분증명서”란 국제노동기구의 「2003년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협약 제185호」에 따라 발급하는 선원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20. “선원수첩”이란 선원의 승무경력, 자격증명, 근로계약 등의 내용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21. “해사노동적합증서”란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 기준에 대한 검사 결과 이 법과 「2006 해사노동협약」(이하 “해사노동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22. “해사노동적합선언서”란 해사노동협약을 이행하는 국내기준을 수록하고 그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채택한 조치사항이 이 법과 해사노동협약의 인증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승인하는 문서를 말한다.
23. “실습선원”이란 「선박직원법」 제2조제4호의2의 해기사 실습생을 포함하여 선원이 될 목적으로 선박에 승선하여 실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법」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어선법」에 따른 어선을 포함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傭船)한 외국선박 및 국내 항과 국내 항 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 17., 2013. 3. 23., 2015. 2. 3.>

1.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
 2. 호수, 강 또는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
 3.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4.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浮船). 다만, 「해운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은 제외한다.
- ② 실습선원에 대하여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중 선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제4조(선원노동위원회) ①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별노동위원회로서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선원노동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 ② 제1항에 따른 선원노동위원회(이하 “선원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그 명칭, 위치, 관할구역, 소관 사무, 위원의 위촉, 그 밖에 선원노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및 「노동위원회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선원의 날) ① 선원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선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6월 셋째 주 금요일을 선원의 날로 정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선원의 날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6. 20.]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40조, 제68조, 제74조, 제74조의2, 제107조(제8조 및 제9조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10조(제10조와 제74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114조(제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5. 1. 6., 2016. 12. 27., 2020. 2. 18., 2024. 10. 22.>

- ② 선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 8. 17.>

제2장 선장의 직무와 권한

제6조(지휘명령권) 선장은 해원을 지휘·감독하며, 선내에 있는 사람에게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7조(출항 전의 검사·보고의무 등) ①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또는 점검(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선박이 항해에 건널 수 있는지 여부

2. 선박에 화물이 실려 있는 상태
 3. 항해에 적합한 장비, 인원, 식료품, 연료 등의 구비 및 상태
 4. 그 밖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선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등의 결과를 선박소유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선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등의 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받은 선박소유자는 선박과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6.]

제8조(항로에 의한 항해) 선장은 항해의 준비가 끝나면 지체 없이 출항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정하여진 항로를 따라 도착항까지 항해하여야 한다.

제9조(선장의 직접 지휘) ①선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1. 항구를 출입할 때
 2.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3. 선박의 충돌·침몰 등 해양사고가 빈발하는 해역을 통과할 때
 4. 그 밖에 선박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때
- ② 선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제60조제3항에 따라 휴식을 취하는 시간에 1등 항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에게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5. 1. 6.>

제10조(재선의무)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상 이상 등 특히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장이 자신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직원 중에서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선박 위험 시의 조치) ①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② 선장은 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 조치를 다하기 전에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5. 1. 6.>

③ 제1항 및 제2항은 해원에게도 준용한다.<신설 2015. 1. 6.>

제12조(선박 충돌 시의 조치) 선박이 서로 충돌하였을 때에는 각 선박의 선장은 서로 인명과 선박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하며 선박의 명칭·소유자·선적항·출항항 및 도착항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조난 선박 등의 구조) 선장은 다른 선박 또는 항공기의 조난을 알았을 때에는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제14조(기상 이상 등의 통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장은 폭풍우 등 기상 이상이 있거나 떠돌아다니는 얼음덩이, 떠다니거나 가라앉은 물건 등 선박의 항해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것과 마주쳤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가까이 있는 선박의 선장과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폭풍우 등 기상 이상의 경우 기상기관 또는 해양경찰관서(대한민국 영해 밖에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의 해상보안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예보(豫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5조(비상배치표 및 훈련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비상시에 조치하여야 할 해원의 임무를 정한 비상배치표를 선내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고 선박에 있는 사람에게 소방훈련, 구명정훈련 등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원은 비상배치표에 명시된 임무대로 훈련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1.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다만, 평수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을 제외한다.

2.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이하 “여객선”이라 한다)

② 여객선의 선장은 탑승한 모든 여객에 대하여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신호와 집합장소의 위치, 구명기구의 비치 장소를 선내에 명시하고, 피난요령 등을 선내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며, 구명기구의 사용법, 피난절차,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여객이 알고 있어야 할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신설 2015. 1. 6.>

③ 선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해원의 휴식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④ 제2항에 따른 비상신호의 방법, 비상시 여객주지사항의 안내시기 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 6.>

[제목개정 2015. 1. 6.]

제16조(항해의 안전 확보)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해당직, 선박의 화재 예방, 그 밖에 항해안전을 위하여 선장이 지켜야 할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7조(사망자 발생 시 인도의무 등) ① 선장은 항해 중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기항 예정 항만 또는 가까운 항만으로 이동하여 시신이 유가족 등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기항 예정 항만 또는 가까운 항만이 시신의 반입을 금지하는 경우 시신을 반입할 수 있는 항만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에 있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사망하여 선내 감염이 우려되거나, 기항 예정 항만에서 시신 인도가 지속적으로 거부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신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6. 15.]

제18조(유류품의 처리) 선장은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에 있는 유류품(遺留品)에 대하여 보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9조(재외국민의 송환) ① 선장은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영사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송환을 명하였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송환에 든 비용의 부담과 송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서류의 비치) ①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내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선박국적증서
2. 선원명부
3. 항해일지
4. 화물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선원명부 및 항해일지 등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21조(선박 운항에 관한 보고)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항만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선박의 충돌, 침몰, 멸실, 화재, 좌초, 기관의 손상 및 그 밖의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2. 항해 중 다른 선박의 조난을 안 경우(무선통신으로 알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인명이나 선박의 구조에 종사한 경우
4.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5. 미리 정하여진 항로를 변경한 경우
6. 선박이 억류되거나 포획된 경우
7. 그 밖에 선박에서 중대한 사고가 일어난 경우

제3장 선내 질서의 유지

제22조(해원의 징계) ① 선장은 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선장의 허가 없이 선박을 떠났을 경우
 3. 선장의 허가 없이 흥기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를 선박에 들여왔을 경우
 4. 선내에서 싸움, 폭행, 음주, 소란행위를 하거나 고의로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
 5.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다른 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였을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선장이 지정한 시간까지 선박에 승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7. 그 밖에 선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② 징계는 훈계, 상륙금지 및 하선으로 하며, 상륙금지는 정박 중에 10일 이내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하선의 징계는 해원이 폭력행위 등으로 선내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고의로 선박 운항에 현저한 지장을 준 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장은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하선의 징계를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④ 선장은 해원을 징계할 경우에는 미리 5명(해원 수가 10명 이내인 경우에는 3명) 이상의 해원으로 구성되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개정 2013. 3. 23.>

제23조(위험물 등에 대한 조치) ① 흥기, 폭발하거나 불붙기 쉬운 물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과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승선한 사람은 즉시 선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4., 2024. 2. 6.>

② 선장은 제1항에 따른 물건에 대하여 보관·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선장은 해원이나 그 밖에 선박에 있는 사람이 인명이나 선박에 위해(危害)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고 할 때에는 그 위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행정기관에 대한 원조 요청) ① 선장은 해원이나 그 밖에 선박에 있는 사람의 행위가 인명이나 선박에 위해를 미치거나 선내 질서를 매우 어지럽게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선내 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선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원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쟁의행위의 제한)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원근로관계에 관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1. 선박이 외국 항에 있는 경우
2. 여객선이 승객을 태우고 항해 중인 경우
3. 위험물 운송을 전용으로 하는 선박이 항해 중인 경우로서 위험물의 종류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제9조에 따라 선장 등이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여 항해 중인 경우
5. 어선이 어장에서 어구를 내릴 때부터 냉동처리 등을 마칠 때까지의 일련의 어획작업 중인 경우

6. 그 밖에 선원근로관계에 관한 쟁의행위로 인명이나 선박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25조의2(강제 근로의 금지) 선박소유자 및 선원은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의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선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5. 1. 6.]

제25조의3(선내 괴롭힘의 금지)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은 선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선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선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3. 10. 24.]

제25조의4(선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선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선박소유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선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선박이 조업 중, 항해 중 또는 외국 항만에 있는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선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선원(이하 “피해선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기항 예정항만 또는 국내 항만 입항 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선박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선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선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선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피해선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선박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선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선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선박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선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선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선박소유자는 선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선원 및 피해선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선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선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3. 10. 24.]

제4장 선원근로계약

제26조(이 법 위반의 계약)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선원근로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로 한다. 이 경우 그 무효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27조(근로조건 명시 등)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선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선원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선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선원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선원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8조(근로조건 위반) ① 선원은 선원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고,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선박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선원은 선원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 근로조건 위반 여부에 대하여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제29조(위약금 등의 예정 금지)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제30조(강제저축 등의 금지)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 관리를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제3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선박소유자는 선원에 대한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相計)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9. 1. 15.]

제32조(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등의 제한) ① 선박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 및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았을 때와 선박소유자가 제98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원이 직무상 부상의 치료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그 후 30일
2. 산전·산후의 여성선원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그 후 30일

제33조(선원근로계약 해지의 예고)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그 선원에게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소유자가 천재지변, 선박의 침몰·멸실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2. 선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선한 경우
3. 선원이 제22조제3항에 따라 하선 징계를 받은 경우

② 선원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30일의 범위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한 예고기간을 두고 선박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4조(정당한 사유 없는 해지 등의 구제신청) ① 선박소유자가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선원은 선원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부터 제86조(제85조제5항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선원근로계약의 존속) ① 선원근로계약이 선박의 항해 중에 종료할 경우에는 그 계약은 선박이 다음 항구에 입항하여 그 항구에서 부릴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내릴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② 선박소유자는 승선·하선 교대에 적당하지 아니한 항구에서 선원근로계약이 종료할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승선·하선 교대에 적당한 항구에 도착하여 그 항구에서 부릴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내릴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원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있다.

제36조(선원근로계약 종료의 특례) 상속 등 포괄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박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옛 선박소유자와 체결한 선원근로계약은 종료하며, 그때부터 새로운 선박소유자와 선원 간에 종전의 선원근로계약과 같은 조건의 새로운 선원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새로운 선박소유자나 선원은 72시간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7조(실업수당)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원에게 제55조에 따른 퇴직금 외에 통상임금의 2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선원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3. 선박의 침몰, 멸실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제38조(송환)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거주지 또는 선원근로계약의 체결지가 아닌 항구에서 하선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선원의 거주지 또는 선원근로계약의 체결지 중 선원이 원하는 곳까지 지체 없이 송환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의 요청에 의하여 송환에 필요한 비용을 선원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환에 든 비용을 선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선박소유자는 6개월 이상 승무하고 송환된 선원에게는 송환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선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하선한 경우
2. 선원이 제22조제3항에 따라 하선 징계를 받고 하선한 경우
3.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부담할 비용은 송환 중의 교통비, 숙박비, 식비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④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선원에게 송환비용을 미리 내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송환수당) 선박소유자는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선한 선원에게 송환에 걸린 일수(日數)에 따라 그 선원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송환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송환을 갈음하여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0조 삭제 <2016. 12. 27.>

제41조 삭제 <2016. 12. 27.>

제42조(선원 송환을 위한 조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가 제38조에 따른 송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선원이 송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선원을 송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환에 든 비용은 그 선박소유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이 국내에 유기(遺棄)되어 해당 선원이 송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원을 자기나라로 송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송환에 든 비용은 해당 외국선박의 기국(旗國)에 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송환조치에 든 비용을 선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송환조치에 든 비용이 변제(辨濟)될 때까지 해당 선박의 출항정지를 명하거나 출항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42조의2(유기구제보험 등의 가입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유기된 선원을 구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유기구제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선박소유자가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선원을 송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송환에 필요한 비용을 선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선박소유자가 제52조에 따른 임금을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선원과의 연락을 두절하는 등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한 경우
3. 선박소유자가 이 법 또는 선원근로계약에 따라 선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식료품, 물,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연료 및 의료지원 등 선상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유기구제보험등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유기 구제비용”이라 한다)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제38조에 따른 송환비용
 2. 제39조에 따른 송환수당
 3. 제1항제3호에 따른 식료품, 물,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연료 및 의료지원 등 선상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
- ③ 유기구제보험등에 가입하는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유기구제보험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선원을 피보험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④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은 선원 또는 선원이 지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이하 “지정대리인”이라 한다)이 유기 구제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유기 구제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기 구제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7.]

제42조의3(다른 급여와의 관계)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유기구제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 보상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선원에 대하여 유기 구제비용의 보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6. 12. 27.]

제42조의4(유기구제보험등의 해지 제한 등) ①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은 법률 또는 보험계약에 따라 유기구제보험등의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유기구제보험등의 해지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계약이 해지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유기구제보험등을 해지할 수 없다.

- ②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은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자기와 유기구제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자기와 유기구제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의 사전통지절차를 거친 후 그 계약을 해지한 경우
 3. 자기와 유기구제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자기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유기구제보험등의 피보험자인 선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2. 27.]

제43조(선원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신고) ① 선원과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선원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선원에게 주어야 하며, 그 선원이 승선하기 전 또는 승선을 위하여 출국하기 전에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의 경우 같은 내용의 선원근로계약이 여러 번 반복하여 체결되는 경우에 미리 선원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신고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선박소유자가 제119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취업규칙에 따라 작성한 선원근로계약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4조(선원명부의 공인) ①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별로 선원명부를 작성하여 선박과 육상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근로조건 또는 선박의 운항 형태에 따라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원의 승선·하선 교대가 있을 때마다 선박에 갖추어 둔 선원명부에 그 사실과 승선 선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다만, 선박소유자가 선원명부에 교대 관련 사항을 적을 수 없을 때에는 선장이 선박소유자를 갈음하여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선박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승선·하선 교대가 있을 때에는 선원 중 항해구역이 「선박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근해구역 안인 선박의 선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제외한 선원의 선원명부에 대하여 해양항만관청의 공인(인터넷을 통한 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선장에게 자신을 갈음하여 공인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제44조의2(해외취업 신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 국적 선박소유자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외취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2조제3항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자를 통해 외국 국적 선박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선원관리사업자가 해당 선원의 해외취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6. 15.]

제45조(선원수첩) ① 선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으로부터 선원수첩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원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소유자로부터 신원보증서를 받음으로써 선원수첩의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선원은 승선하고 있는 동안에는 제1항에 따른 선원수첩이나 신원보증서를 선장에게 제출하여 선장이 보관하게 하여야 하고, 승선을 위하여 여행하거나 선박을 떠날 때에는 선원 자신

이 지녀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나 선장은 제44조제3항에 따라 선원명부의 공인을 받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하거나 하선하는 선원의 선원수첩이나 신원보증서를 선원명부와 함께 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 선원수첩이나 신원보증서에 승선·하선 공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선박소유자나 선장이 고의로 선원명부의 공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행방불명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선원명부의 공인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하선하려는 선원이 직접 선원수첩이나 신원보증서에 하선 공인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승선·하선 공인을 받은 경우 해양항만관청은 선원수첩이나 신원보증서에 대한 공인을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5. 1. 6.>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취업실태나 선원수첩 소지 여부를 파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원수첩을 검사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5. 1. 6.>

⑥ 선원수첩의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1. 6.>

제46조(선원수첩의 발급 제한) ① 해양항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선원수첩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2.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삭제<2021. 6. 15.>

② 해양항만관청은 선원수첩을 발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선박 또는 승선구역을 한정하거나 유효기간을 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제47조(선원수첩의 실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원수첩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3. 3. 23.>

1. 선원수첩을 발급한 날 또는 하선한 날부터 5년(군 복무기간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승선하지 아니한 선원의 선원수첩
2. 사망한 선원의 선원수첩
3. 선원수첩을 재발급한 경우 종전의 선원수첩

제48조(선원신분증명서) ① 외국 항을 출입하는 선박에 승선할 선원(대한민국 국민인 선원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으로부터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외국선박에 승선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③ 선원신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0년으로 한다.

④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제한 및 실효에 관하여는 제46조제1항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원수첩”은 “선원신분증명서”로 본다.

- ⑤ 선원은 선장이 안전유지에 필요하여 선원의 서면 동의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외에는 선원 신분증명서를 지녀야 한다.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신분증명서의 제작·보관·발급과정,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화시스템 등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수준 및 보안장비의 상태 등에 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5년마다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⑦ 선원신분증명서의 규격, 수록내용 및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선원수첩 등의 재발급) 선원수첩이나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선원수첩이나 선원신분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50조(선원수첩 등의 대여 및 부당사용 금지) 선원은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의2(여권 등 대리보관 금지)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여권 등 신분증을 대리하여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 6. 15.]

제51조(승무경력증명서의 발급) 선박소유자나 선장은 선원으로부터 승무경력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요청을 받으면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5장 임금

제52조(임금의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선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원이 청구하거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가 지정하는 가족이나 그 밖의 사람에게 통화로 지급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이 청구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장에게 임금의 일부를 상륙하는 기항지(寄港地)에서 통용되는 통화로 직접 선원에게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⑤ 임금을 일할계산(日割計算)하는 경우에는 30일을 1개월로 본다.

제53조(기일 전 지급) 선박소유자는 선원이나 그 가족의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선원이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금 지급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4조(승무 선원의 부상 또는 질병 중의 임금)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선원이 승무하고 있는 기간에는 어선원 외의 선원에게는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의 임금을, 어선원에게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노동위원회가 그 부상이나 질병이 선원의 고의로 인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퇴직금제도) ① 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승선평균임금의 3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수준을 밑돌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원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단체협약이나 선원근로계약에 의하여 퇴직금제도를 갈음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시행할 때 선원이 요구하면 선원이 퇴직하기 전에 그 선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③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선원의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6개월 미만은 6개월로 보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본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제외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선원으로서 선원근로계약의 기간이 끝나거나 선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되어 퇴직하는 선원에게 승선평균임금의 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55조의2(금품 청산)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18.]

제55조의3(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선박소유자는 제55조의2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선박소유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0. 2. 18.]

제55조의4(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2조, 제55조의2 및 제62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체불선박소유자”라 한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불선박소유자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 체불선박소유자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불선박소유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 등 명단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18.]

제55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체불선박소유자(자료제공 요구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자료제공 요구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선박소유자의 경우에 한정한다)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규모 등에 관한 자료(이하 “임금등 체불자료”라 한다)를 요구할 때에는 임금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불선박소유자의 사망·폐업으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임금등 체불자료를 받은 자는 이를 체불선박소유자의 신용도·신용거래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18.]

제56조(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가입) ① 선박소유자(선박소유자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할 임금 및 퇴직금(이하 “체불임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선원의 체불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기금의 적용을 받는 선박소유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공제 또는 기금은 적어도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7.>

1. 제52조에 따른 임금의 최종 4개월분
2.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최종 4년분
-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업자, 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는 그 퇴직한 선원 또는 지정대리인이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한다.<개정 2016. 12. 27.>
- ④ 제3항에 따라 선원 또는 지정대리인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한 보험업자, 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해당 선박소유자에 대한 선원의 체불임금 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개정 2016. 12. 27.>
- ⑤ 제152조의3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제4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개정 2016. 12. 27., 2025. 9. 16.>
- ⑥ 그 밖에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기금의 운영 및 관리, 체불임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6. 15.>

제56조의2(보고 및 서류의 제출 요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6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한 운영 및 임금등을 체불당한 피해 선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운영자, 선박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적용받는 기금운영자, 선박소유자 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입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서류 제출 요구, 출입 검사 및 시정명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15.]

제57조(어선원의 임금에 대한 특례) ① 어선원의 임금은 월 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하거나 비율급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금을 받는 어선원에 대하여 제37조, 제39조, 제54조, 제55조, 제96조, 제97조 및 제99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업수당 등을 산정할 때 적용할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은 월 고정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어선원의 임금을 비율급으로 하는 경우에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에게 월 고정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율급의 월액이 월 고정급보다 적을 때에는 미리 지급한 월 고정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율급의 월액으로 본다.

제58조(임금대장) 선박소유자는 임금대장을 갖추어 두고,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59조(최저임금)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원의 임금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6장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

제60조(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①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으로 한다. 다만, 선박소유자와 선원 간에 합의하여 1주간 16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이하 “시간외근로”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해당직근무를 하는 선원에게 1주간에 16시간의 범위에서, 그 밖의 선원에게는 1주간에 4시간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로를 명할 수 있다.

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원에게 임의의 24시간에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과 임의의 1주간에 77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임의의 24시간에 대한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은 한 차례만 분할할 수 있으며, 분할된 휴식시간 중 하나는 최소 6시간 이상 연속되어야 하고 연속적인 휴식시간 사이의 간격은 14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양항만관청은 입항·출항 빈도, 선원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직선원이나 단기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에 대하여 근로시간의 기준, 휴식시간의 분할과 부여간격에 관한 기준을 달리 정하는 단체협약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항만청장은 해당 단체협약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휴식시간의 완화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제4항의 단체협약에는 제69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부여 간격보다 더 빈번하거나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일수보다 더 긴 기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선박소유자는 인명, 선박 또는 화물의 안전을 도모하거나, 해양 오염 또는 해상보안을 확보하거나, 인명이나 다른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선원에게 시간외근로를 명하거나 제3항에 따른 휴식시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⑦ 선박소유자는 제6항에 따라 휴식시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작업을 한 선원 또는 휴식시간 중에 작업에 호출되어 정상적인 휴식을 취하지 못한 선원에게 작업시간에 상응한 보상휴식을 주어야 한다.

⑧ 선박소유자는 선박이 정박 중일 때에는 선원에게 1주간에 1일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61조(소년선원의 근로시간 등) 선박소유자는 18세 미만의 소년선원의 보호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시간, 휴식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61조의2(실습선원의 실습시간 및 휴식시간 등) ① 실습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항해당직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1주간에 16시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실습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휴식시간으로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임의의 24시간 중 한 차례의 휴식시간은 8시간 이상 연속되어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실습선원에게 1주간에 최소 1일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

④ 선박소유자는 실습선원에게 인명, 선박 또는 화물의 안전을 도모하거나, 해양오염 또는 해상보안을 확보하거나, 인명 또는 다른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실습시간을 초과하는 훈련 또는 작업을 명하거나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훈련 또는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18.]

제62조(시간외근로수당 등) ①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원에게 시간외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시간외근로를 한 선원(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보상휴식을 받은 선원은 제외한다)

2. 휴일에 근로를 한 선원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종(船種), 선박의 크기, 항해 구역에 따른 근로의 정도·실적 등을 고려하여 일정액을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③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원의 1일 근로시간, 휴식시간 및 시간외근로를 기록할 서류를 선박에 갖추어 두고 선장에게 근로시간, 휴식시간, 시간외근로 및 그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선원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본인의 기록이 적혀 있는 제3항에 따른 서류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시간외근로 중 1주간에 4시간의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제70조에 따른 유급휴가 일수에 1개월의 승무기간마다 1일을 추가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63조(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①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선원당직국제협약”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선박소유자는 선박 운항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1. 해기(海技) 능력의 향상을 위한 선원의 선상훈련 및 평가계획의 수립·실시

1의2. 해양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선상 비상훈련의 실시

2. 항해당직에 관한 상세한 기준의 작성·시행

3. 선박 운항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선상훈련·평가계획의 수립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항해당직 기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64조(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갑판부나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총톤수 500톤 이상으로 1일 항해시간이 16시간 이상인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 3명 이상을 갑판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화물적재선박[산적액체화물(散積液體貨物)을 수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선박만 해당한다]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명정 조종사 자격증을 가진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신설 2015. 1. 6.>

⑥ 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인화점이 섭씨 60도 미만인 연료를 말한다)를 사용하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하 “가스연료 등 추진선박”이라 한다)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신설 2020. 2. 18.>

제65조(승무정원) ① 선박소유자는 제60조, 제64조 및 제76조를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선원의 정원[이하 “승무정원”(乗務定員)이라 한다]을 정하여 해양항만관청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선박제원, 항해시간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승무정원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승무정원을 다시 정하여 해양항만관청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 6. 15.>

③ 해양항만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박의 승무정원을 인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무정원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6. 15.>

④ 선박소유자는 운항 중인 선박에는 항상 승무정원 증서에 적힌 수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하며,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인원을 채워야 한다. 다만, 해당 선박이 외국 항에 있는 등 지체 없이 인원을 채우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21. 6. 15.>

제66조(선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한 특례) 선박의 설비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 그 선박에 적용할 선원의 자격요건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제64조와 제65조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제66조의2(여객선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기준) ① 여객선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적성심사 기준(이하 “적성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여객선 소유자는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선장으로 승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적성심사기준의 충족확인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6.]

제67조(예비원) ① 선박소유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총승선 선원 수의 10퍼센트 이상의 예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항해선이 아닌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의 종류·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② 선박소유자는 유급휴가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의 예비원에게 통상임금의 70퍼센트를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68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 17., 2013. 3. 23., 2015. 2. 3.>

1. 범선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것
2. 어획물 운반선을 제외한 어선
3.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것
4.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할 선원의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7장 유급휴가

제69조(유급휴가) ① 선박소유자(제74조에 따른 어선의 선박소유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3조에서 같다)는 선원이 8개월간 계속하여 승무(수리 중이거나 계류 중인 선박에 승무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4개월 이내에 선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선박이 항해 중일 때에는 항해를 마칠 때까지 유급휴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선원이 같은 선박소유자의 다른 선박에 옮겨 타기 위하여 여행하는 기간은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으로 본다.

③ 산전·산후의 여성선원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④ 선원이 8개월간 계속하여 승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미 승무한 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선박소유자는 18세 미만의 소년선원 보호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70조(유급휴가의 일수) ① 제69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6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연해구역(이하 “연해구역”이라 한다)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또는 15일 이내의 기간마다 국내 항에 기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유급휴가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5일로 한다.

- ③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선원에게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가 일수에 1일의 유급휴가를 더한다.
- ④ 제69조제3항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유급휴가 일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유급휴가 일수 계산방법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2013. 3. 23.>
- ⑤ 유급휴가 일수를 계산할 때 1개월 미만의 승무기간에 대하여는 비율로 계산하되, 1일 미만은 1일로 계산한다.

제71조(유급휴가 사용일수의 계산) 선원이 실제 사용한 유급휴가 일수의 계산은 선원이 유급휴가를 목적으로 하선하고 자기나라에 도착한 날(제38조제1항에 따라 통상적으로 송환에 걸리는 기간이 도래하는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승선일(외국에서 승선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을 말한다) 전날까지의 일수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유급휴가 사용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1. 11.>

1.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노동절
2. 선원이 제116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교육훈련 기간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제72조(유급휴가의 부여방법) ① 유급휴가를 줄 시기와 항구에 대하여는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협의에 따른다.

- ② 유급휴가는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나누어 줄 수 있다.

제73조(유급휴가급) ① 선박소유자는 유급휴가 중인 선원에게 통상임금을 유급휴가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급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74조(어선원의 유급휴가에 대한 특례) 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어획물 운반선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선박소유자는 어선원이 같은 사업체에 속하는 어선에서 1년 이상 계속 승무한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어선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어선에서의 승무를 중지한 경우 그 중지한 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속하여 승무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어선원의 유급휴가 일수, 부여방법, 유급휴가급 등 어선원의 유급휴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75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어선(어획물 운반선과 제74조에 따른 어선은 제외한다)

2. 범선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것
3. 가족만 승무하여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것

제8장 선내 급식과 안전 및 보건

제76조(선내 급식) ①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당한 양과 질의 식료품과 물을 선박에 공급하고, 조리과 급식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선내급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무 중인 선원의 다양한 문화와 종교적 배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선내 급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선박조리사(이하 “선박조리사”라 한다)를 선박에 승무시켜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하거나 선박조리사를 갈음하여 선상 조리과 급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승무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조리사의 자격을 위한 교육과 시험을 실시한다. <개정 2013. 3. 23.>

제77조(선내 급식비) ①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76조제1항에 따른 식료품 공급을 갈음하여 선내 급식을 위한 식료품의 구입비용(이하 “선내 급식비”라 한다)을 선장에게 지급하고, 선장에게 선내 급식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장은 선원 모두에게 차별 없이 선내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선박소유자는 선내 급식비를 지급할 때에는 선원 1인당 1일 기준액을 밝혀야 한다.

③ 선내 급식비는 선내 급식을 위한 식료품 구입과 운반을 위한 비용 외의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내 급식비의 최저기준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최저기준액 이상의 선내 급식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78조(선내 안전·보건 등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승무 중인 선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 근로 및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개정 2013. 3. 23.>

1. 선내 안전·보건정책의 수립·집행·조정 및 통제
2.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의 작성
3. 선내 안전·보건의 증진을 위한 국내 지침의 개발과 보급
4. 선내 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그 시설의 설치·운영
5. 선내 안전·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및 무재해운동 등 안전문화 추진
6. 선내 재해에 관한 조사 및 그 통계의 유지·관리

7. 그 밖에 선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박소유자 단체 및 선원 단체의 대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내 안전·보건과 선내 사고예방을 위한 활동이 통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증진될 수 있도록 국제노동기구 등 관계 국제기구 및 그 회원국과의 협력을 모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제79조(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①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이하 “선내안전보건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선원의 안전·건강 관련 교육훈련 및 위험성 평가 정책
2. 선원의 직무상 사고·상해 및 질병(이하 “직무상 사고등”이라 한다)의 예방 조치
3. 선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선내 프로그램
4. 선내 안전저해요인의 검사·보고와 시정
5. 선내 직무상 사고등의 조사 및 보고
6. 선장과 선내 안전·건강담당자의 직무
7. 선내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8.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선내안전보건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제80조(선내안전보건기준의 개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 단체 및 선원 단체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선내안전보건기준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선내안전보건기준을 개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81조(직무상 사고등의 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2조제4항에 따라 직무상 사고등의 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직무상 사고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조사한 직무상 사고등에 관한 통계를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그 통계를 분석하여 자료집을 발간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내용이나 조사 결과의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제82조(선박소유자 등의 의무)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보호장구와 방호장치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방호장치가 없는 기계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한 선내 작업에는 일정한 경험이나 기능을 가진 선원을 종사시켜야 한다.<개정 2013. 3. 23.>

- ③ 선박소유자는 감염병, 정신질환, 그 밖의 질병을 가진 사람 중에서 승무가 곤란하다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원을 승무시켜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 3. 23.>
- ④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직무상 사고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양항만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선박소유자는 선내 작업 시의 위험 방지, 의약품의 비치와 선내위생의 유지 및 이에 관한 교육의 시행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3. 3. 23.>
- ⑥ 선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박이 기항하고 있는 항구에서 선원이 의료기관에서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를 받기를 요구하는 경우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는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에게 제복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복의 제공시기, 복제 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5. 1. 6.>

제83조(선원의 의무 등) ① 선원은 선내 작업 시의 위험 방지와 선내 위생의 유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선원은 방호시설이 없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기계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 ③ 선원은 제82조제7항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제공한 제복을 입고 근무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6.>

제84조(의사의 승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에 의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 1. 3일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최대 승선인원이 100명 이상인 선박(어선은 제외한다)
-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모선식(母船式)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제85조(의료관리자) ① 의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선박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선박에 의료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 1. 「선박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원양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선박
-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
-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관리자(이하 “의료관리자”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발급된 의료관리자 자격증을 가진 선원(18세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양항만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에 따른 의료관리자 자격증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졌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다.<개정 2013. 3. 23.>
- ④ 의료관리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 내의 의료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⑤ 선박소유자는 의료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하선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른 의료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승무시켜야 한다. <신설 2018. 12. 11.>

제86조(응급처치 담당자) ① 제84조 또는 제85조제1항에 따른 의사나 의료관리자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선박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선박에 응급처치를 담당하는 선원(이하 “응급처치 담당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1.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어선은 제외한다)

2. 여객정원이 13명 이상인 여객선

② 선박소유자는 응급처치 담당자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선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87조(건강진단서) ① 선박소유자는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의원의 의사가 승무에 적당하다는 것을 증명한 건강진단서를 가진 사람만을 선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건강진단서의 발급 및 그 밖에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88조(무선 등에 의한 의료조언)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 주변을 항해 중인 선박(외국국적 선박을 포함한다)의 선장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선원(이하 “상병선원”이라 한다)에 대한 의료조언을 요청할 경우에는 무선 또는 위성통신으로 의료조언을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조언을 제공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89조(외국인 선원에 대한 진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 항에 입항한 선박의 외국인 상병선원이 진료받기를 요청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9장 소년선원과 여성선원

제90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선원이 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미성년자는 선원근로계약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진다.

제91조(사용제한) ① 선박소유자는 16세 미만인 사람을 선원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그 가족만 승무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선박소유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선원으로 사용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③ 선박소유자는 18세 미만의 선원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선내 작업과 위생상 해로운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 3. 23.>
- ④ 선박소유자는 여성선원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임신·출산에 해롭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 3. 23.>
- ⑤ 선박소유자는 임신 중인 여성선원을 선내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항해에 대하여 임신 중인 여성선원이 선내 작업을 신청하고, 임신이나 출산에 해롭거나 위험하지 아니하다고 의사가 인정한 경우
 2. 임신 중인 사실을 항해 중 알게 된 경우로서 해당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 ⑥ 선박소유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선원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선내 작업과 위생상 해로운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 3. 23.>
- ⑦ 가족만 승무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2조(야간작업의 금지) ① 선박소유자는 18세 미만의 선원을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를 포함하는 최소 9시간 동안은 작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다만, 가벼운 일로서 그 선원의 동의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 ② 제60조제6항에 따른 작업에 종사시키는 경우나 가족만 승무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3조(생리휴식) 선박소유자는 여성선원이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식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21. 6. 15.>

제10장 재해보상

제94조(요양보상)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기항지에서의 상륙기간, 승선·하선에 수반되는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하여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요양에 필요한 3개월 범위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31.>

1. 선원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요양을 받는 선원의 본인 부담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선원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이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서 승무 중 치료받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선원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원의 고의에 의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하여는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제2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5조(요양의 범위) 제94조에 따른 요양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진찰
2. 약제나 치료재료와 의지(義肢) 및 그 밖의 보철구 지급
3. 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병원, 진료소 및 그 밖에 치료에 필요한 자택 외의 장소에 수용(식사 제공을 포함한다)
5. 간병(看病)
6. 이송
7. 통원치료에 필요한 교통비

제96조(상병보상) ① 선박소유자는 제94조제1항에 따라 요양 중인 선원에게 4개월의 범위에서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傷病補償)을 하여야 하며, 4개월이 지나도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제94조제2항에 따라 요양 중인 선원에게 요양기간(3개월의 범위로 한정한다) 중 매월 1회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병보상 지급액이 제59조에 따른 선원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선원 최저임금액을 상병보상의 지급액으로 한다.<신설 2021. 6. 15.>

제97조(장해보상) 선원이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장애등급에 따른 일수에 승선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98조(일시보상) 선박소유자는 제94조제1항 및 제96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고 있는 선원이 2년이 지나도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제1급의 장해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원에게 한꺼번에 지급함으로써 제94조제1항, 제96조제1항 또는 제97조에 따른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99조(유족보상)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사망(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중의 사망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제94조제2항에 따른 요양 중의 사망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원인이 선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선박소유자가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조(장례비)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 중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례비(葬禮費)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2.>

② 제1항에 따른 장례비를 지급하여야 할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장례를 지낸 자에게 장례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2.>

[제목개정 2024. 10. 22.]

제101조(행방불명보상)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해상에서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부양자에게 1개월분의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의 3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행방불명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선원의 행방불명기간이 1개월을 지났을 때에는 제99조 및 제100조를 적용한다.

제102조(소지품 유실보상)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동안 해양사고로 소지품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2개월분의 범위에서 그 잃어버린 소지품의 가액(價額)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03조(다른 급여와의 관계) ①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례비의 지급(이하 “재해보상”이라 한다)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가액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16. 12. 27., 2024. 10. 22.>

② 선박소유자는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 선원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선원이 가지는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12. 27.>

제103조의2(재해보상 지급의 제한) ① 제99조에 따른 유족보상 또는 제101조에 따른 행방불명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선원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양육책임 이행과 관련한 해양항만관청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 지급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항만관청에 양육책임 이행과 관련한 심의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재해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 23.]

제104조(해양항만관청의 심사·조정) ① 선원의 직무상 부상·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재해보상금액의 결정 및 그 밖에 재해보상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해양항만관청에 심사나 조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심사 또는 조정의 청구를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조정을 하여야 한다.
- ③ 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심사 또는 조정의 청구가 없어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심사 또는 조정을 할 수 있다.
- ④ 해양항만관청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사나 조정을 할 경우에는 선장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⑤ 해양항만관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사나 조정을 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사에게 진단이나 검안(檢案)을 시킬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심사나 조정의 청구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제105조(선원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① 해양항만관청이 제104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심사나 조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심사나 조정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원노동위원회에 심사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선원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나 중재의 청구를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한다.

제106조(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 등) ① 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에 승무하는 모든 선원에 대하여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재해보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2016. 12. 27.>

- ② 선박소유자는 재해보상보험등에 가입할 경우 보험가입 금액은 승선평균임금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6., 2016. 12. 27.>
- ③ 재해보상보험등에 가입하는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재해보상보험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재해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선원을 피보험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7.>
- ④ 재해보험사업자등은 선원, 유족 또는 지정대리인이 재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재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7.>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의 청구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2. 27.>

[제목개정 2016. 12. 27.]

제106조의2(재해보상보험등의 해지 제한 등) ① 재해보험사업자등은 법률 또는 보험계약에 따라 재해보상보험등의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해보상보험등의 해지에정일의 30일 전까지 계약이 해지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재해보상보험등을 해지할 수 없다.

- ② 재해보험사업자등은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자기와 재해보상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자기와 재해보상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의 사전통지절차를 거친 후 그 계약을 해지한 경우
 3. 자기와 재해보상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자기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재해보상보험등의 피보험자인 선원에게 알려야 한다.
- [본조신설 2016. 12. 27.]

제11장 복지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

- 제107조(선원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제5항에 따른 선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선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선원정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 ② 선원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 12. 11., 2022. 1. 4.>
1. 선원복지에 관한 사항
 - 가. 선원복지 수요의 측정과 전망
 - 나. 선원복지시설에 대한 장기·단기 공급대책
 - 다. 인력·조직과 재정 등 선원복지자원의 조달, 관리 및 지원
 - 라. 선원의 직업안정 및 직업재활
 - 마. 복지와 관련된 통계의 수집과 정리
 - 바. 선원복지시설 설치 항구의 선정
 - 사. 선내 식품영양의 향상
 - 아. 선원복지와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 자. 선원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 차.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선원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 가. 선원인력의 수요 전망 및 양성
 - 나. 선원의 구직·구인 및 직업소개 기관의 운영
 - 다. 외국인 선원의 고용
 - 라.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인력의 수급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선원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가. 선원 교육훈련의 중장기 목표
 - 나. 선원 교육훈련의 장기·중기·단기 추진계획

다. 선원 교육훈련 기관 및 운영방식

라.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에 관한 사항(교육기관의 운영, 인력의 양성 및 관련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지원 등을 포함한다)

마.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정책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선원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원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신설

2019. 1. 15.>

⑤ 선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선원정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 1. 15.>

1. 선원정책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선원정책의 성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요청된 선원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선원복지·선원인력의 수급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선원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된다. 이 경우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선원 관련 단체의 대표자나 전문가로 한다.

<개정 2019. 1. 15.>

⑦ 그 밖에 선원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9. 1. 15.>

[전문개정 2015. 1. 6.]

제108조(선원의 인력확보 및 직업안정업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선원인력을 확보하고 선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 3. 23., 2024.

10. 22.>

1. 선원의 효과적인 취업 알선·모집 및 지원에 관한 업무

2. 선원인력 수요·공급의 실태 파악을 위한 선원의 등록과 실업 대책에 관한 업무

2의2. 소득 증대 등 선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업무

3. 제112조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

4. 선원의 적성검사에 관한 업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노동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단체 및 그 회원국과의 협력과 관련된 업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3. 3. 23.>

[제목개정 2024. 10. 22.]

제109조(선원의 구직 및 구인등록) ① 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2조에 따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또는 구직·구인 관계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구직·구인등록기관”이라 한다)에 구직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선원을 고용하려는 자는 구직·구인등록기관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구직·구인등록기관은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할 때에는 선박소유자 단체나 제112조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0조(선원공급사업의 금지) 구직·구인등록기관, 제112조제3항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외에는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제111조(금품 등의 수령 금지) 선원을 고용하려는 자, 선원의 직업소개·모집·채용·관리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밖에 선원의 노무·인사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선원 또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그 직업소개·모집·채용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12조(선원관리사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관리사업제도를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관련 선박소유자 단체 및 선원 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선박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선원의 인력관리업무를 수탁(受託)하여 대행하는 사업(이하 “선원관리사업”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③ 선원관리사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선원관리사업자”라 한다)는 선박소유자의 인력관리업무 담당자로서 수탁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수탁한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할 때 선박소유자로 본다.

④ 선원관리사업자는 선원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그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해양항만관청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15.>

⑥ 선원관리사업자는 수탁한 업무의 내용을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승무하려는 선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1. 6. 15.>

⑦ 선원관리사업자는 선박소유자(외국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선원의 인력관리업무를 수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업무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1. 6. 15.>

1.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2.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⑧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또는 부담금의 의무에 관하여는 선원관리사업자를 사용자로 본다. <개정 2021. 6. 15.>

⑨ 선원관리사업자는 선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선원관리사업을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21. 6. 15.>

1. 선원 인력관리 수탁 계약서에 따라 선주로부터 선원관리사업자가 지급받아 선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 퇴직금, 유급휴가급 및 재해보상비 등의 지급 시기 및 금액

2. 16세 미만인 사람을 계약상대자가 고용할 선원으로 알선하는 행위의 금지

⑩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관리사업자가 제9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선원관리사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1. 6. 15.>

⑪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항에 따른 점검 결과 선원관리사업자가 제9항제1호의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신설 2021. 6. 15.>

제113조(국제협약의 준수 등) ① 구직·구인등록기관, 선원관리사업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수산 관련 단체나 기관은 선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식으로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여야 하고, 선원의 직업소개와 관련하여 이 법, 「해운법」 및 해사노동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선박소유자는 해사노동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가의 선원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선원을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사노동협약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해사노동협약의 기준을 충족하는 선원직업소개소로부터 소개받은 선원을 고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제114조(불만 제기와 조사) 해양수산부장관은 구직·구인등록기관, 선원관리사업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직업소개 활동과 관련하여 선원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되면 이를 즉시 조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소유자와 선원대표를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115조(선원인력수급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자질향상 및 선원인력 수급(需給)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선원인력 수급관리에 관한 제도(이하 “선원인력수급관리제도”라 한다)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인력의 수급이 균형을 잃어 수급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7조제5항에 따른 선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원인력 공급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5. 1. 6., 2019. 1. 15.>

③ 선원인력수급관리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선원 등의 교육훈련) ① 선원과 선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선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무를 제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1. 6.>

③ 선원, 선원이 되려는 사람, 선박소유자 및 선원관리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선원과 관련된 노무·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2. 1. 4.>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기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 4.>

[제목개정 2022. 1. 4.]

제117조(선원의 교육훈련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6조에 따른 교육훈련 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라 한다)이나 그 밖의 선원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선원을 고용하고 있는 선박소유자 또는 제116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다만, 선박 승선을 위한 안전교육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에 관하여는 그 경비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18조(정부의 보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7조제1항 및 제158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및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국유재산 또는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복지 증진과 기술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국유재산 또는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12장 취업규칙

제119조(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①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23. 10. 24.>

1.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마감 및 지급시기와 승급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 휴일, 선내 복무 및 승무정원에 관한 사항
3. 유급휴가 부여의 조건, 승선·하선 교대 및 여비에 관한 사항
4. 선내 급식과 선원의 후생·안전·의료 및 보건에 관한 사항
5. 퇴직에 관한 사항

6. 실업수당, 퇴직금, 재해보상, 재해보상보험 가입 등에 관한 사항
 7. 인사관리, 상벌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9.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내용 중 선원의 근로조건에 해당되는 사항
 10. 산전·산후 휴가, 육아휴직 등 여성선원의 모성 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11. 선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에 따른 단체협약(단체협약이 제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내용을 적은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20조(취업규칙의 작성 절차) ① 제119조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선박소유자는 그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선박소유자가 사용하는 선원의 과반수로서 조직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선원의 과반수로서 조직되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선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선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19조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의견 또는 동의의 내용을 적은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20조의2(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선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승선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제121조(취업규칙의 감독) 해양항만관청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을 위반한 취업규칙에 대하여는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22조(취업규칙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선원근로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로 한다. 이 경우 그 무효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3장 감독 등

제123조(선원의 근로기준 등에 대한 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선박과 그 밖의 사업장에 대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6조제1항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을 선내에 갖추어 둔 선박에 대하여는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어선법」에 따른 어선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주기를 늘릴 수 있다.

제124조(행정처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나 선원이 이 법, 「근로기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적용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소유자나 선원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나 선원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항해를 계속하는 것이 해당 선박과 승선자에게 현저한 위험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선박의 항해정지를 명하거나 항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이 항해 중일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선박이 입항하여야 할 항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처분을 한 선박에 대하여 그 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4조제4항에 따른 구명정 조종사 또는 제85조제3항에 따른 의료관리자가 그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8.>

제125조(선원근로감독관) ① 제123조에 따른 검사와 선원의 근로감독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선원근로감독관을 둔다. <개정 2013. 3. 23.>

② 선원근로감독관의 자격·임면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선원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선원근로감독관은 이 법에 따른 선원근로감독을 위하여 선박소유자, 선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장부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선박이나 그 밖의 사업장을 출입하여 검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개시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선원근로감독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출입 시간·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선원근로감독관은 승무를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렸다고 인정하는 선원의 진찰을 의사에게 위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받은 의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진찰명령서를 선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27조(사법경찰권) ① 선원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이 법, 「근로기준법」 및 그 밖의 선원근로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제출, 심문이나 신문(訊問) 등 수사는 오로지 검사(檢事)와 선원근로감독관이 수행한다. 다만, 선원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8조(비밀유지 의무 등) ① 선원근로감독관이거나 선원근로감독관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선원근로감독관은 직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③ 선원근로감독관은 선원근로감독과 관련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9조(감독기관 등에 대한 신고 등) ① 선원은 선박소유자나 선장이 이 법, 「근로기준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나 선장에게 그 불만을 제기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선원노동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제1항에 따라 불만을 제기하거나 신고한 것을 이유로 그 선원과의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④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제기되는 선원의 불만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선박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28.>

1. 선원의 선내 불만 제기 방법

2. 선내 불만 처리절차도

3. 선내 고충처리 담당자

4. 제3호에 따른 선내 고충처리 담당자의 임무와 권한에 관한 사항

5. 해양항만관청, 선원노동위원회 등 선원의 근로·인권 관련 기관의 담당자 연락처

⑤ 외국인 선원이 승선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제4항에 따른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승선하는 모든 외국인 선원의 국적국 언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여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17. 11. 28.>

제129조의2(선원실습 운영 지도 및 점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1조의2에 따른 실습시간 및 휴식시간 준수 등과 「선박직원법」 제21조의2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계약의 체결 등 선원실습 운영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에게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등의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받는 자에게 미리 조사 일시, 조사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18.]

제130조(해양항만관청의 주선) 해양항만관청은 선박소유자와 선원 간에 생긴 근로관계에 관한 분쟁(「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노동쟁의는 제외한다)의 해결을 주선할 수 있다.

제131조(외국에서의 행정관청의 업무) 이 법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이 수행할 사무는 외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영사가 수행한다.

제132조(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국내 항(정박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기국에서 발급한 승무정원증명서와 그 증명서에 따른 선원의 승선 여부
2. 선원당직국제협약의 항해당직 기준에 따른 항해당직의 시행 여부
3. 선원당직국제협약에 따른 유효한 선원자격증명서나 그 면제증명서의 소지 여부
4. 해사노동협약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 및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소지 여부
5. 해사노동협약에 따른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의 준수 여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점검을 할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선박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점검하고, 해당 선원에게 질문하거나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 등에 대하여 직접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점검은 「선박안전법」 제68조에 따른다.

제133조(외국선박의 점검 절차 등) ① 제1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외국선박의 점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항목의 점검

- 가. 해사노동협약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적절성과 유효성 확인
- 나.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이 해사노동협약의 기준에 맞는지 여부
- 다. 선박이 해사노동협약의 준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변경하였는지 여부
- 라. 선원의 불만 신고가 있었는지 여부

2. 제1호에 따른 기본항목의 점검 결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세점검의 시행.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선장에게 상세점검을 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 가. 선원의 안전, 건강이나 보안에 명백히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나. 점검결과 해사노동협약의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였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상세점검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라 목에 따라 불만사항이 신고되었을 때의 점검범위는 해당 신고사항으로 한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상세점검 결과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이 해사노동협약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기국에 통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상세점검 결과 그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선박의 출항정지를 명하거나 출항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선원의 안전, 건강 및 보안에 명백히 위해가 되는 경우
2. 해사노동협약의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기국에 통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제4항에 따른 처분에 불복하는 자의 이의신청과 그 처리 절차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6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4조(외국선박의 선원 불만 처리절차)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 항에 정박 중이거나 계류 중인 외국선박이 해사노동협약의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신고를 선원 등으로부터 받은 경우 제132조에 따라 점검을 시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4장 해사노동적합증서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135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어선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총톤수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항해선
2. 총톤수 500톤 이상의 항해선으로서 다른 나라 안의 항 사이를 항해하는 선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선박 외의 선박소유자가 요청하는 선박

제136조(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의 선내 비치 등) ① 제135조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제138조에 따라 발급받은 해사노동적합증서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승인받은 해사노동적합선언서를 선내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사본 각 1부를 선내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형식과 내용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37조(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① 제135조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제138조 제1항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증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최초인증검사: 이 법과 해사노동협약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최초 검사
2. 갱신인증검사: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났을 때에 하는 검사
3. 중간인증검사: 최초인증검사와 갱신인증검사 사이 또는 갱신인증검사와 갱신인증검사 사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하는 검사

- ②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 등 인증검사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제1호의 최초인증검사를 받기 전에 선박의 국적 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시인증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 거주설비의 주요 개조나 선박에서 노동분쟁이 발생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인증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증검사의 내용, 절차 및 검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 ⑥ 제135조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해당 인증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박의 시운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 제138조(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최초인증검사나 갱신인증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사실을 발급대장에 기재하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외국선박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국 정부나 그 정부가 지정한 대행기관에서 이 법의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기준에 따라 최초인증검사나 갱신인증검사를 받고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급받아 유효한 증서를 선내에 갖추어 둔 경우 그 해사노동적합증서는 이 법에 따라 발급한 증서로 본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중간인증검사나 특별인증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발급된 해사노동적합증서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 결과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7조제3항에 따른 임시인증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 ⑤ 제1항에 따라 발급된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발급된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 ⑥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 ⑦ 선박소유자가 제1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간인증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합격할 때까지 제1항에 따라 발급된 해사노동적합증서의 효력은 정지된다.
 -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급받은 선박이 특별인증검사를 통하여 제137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되돌려 주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제139조(해사노동인증검사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해사노동인증검사관(이하 “인증검사관”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제132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등의 업무
2. 제136조제1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에 관한 업무
3. 제13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증검사, 임시인증검사 및 특별인증검사에 관한 업무
4. 제138조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

제140조(인증검사업무 등의 대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3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된 대행기관(이하 “인증검사 대행기관”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인증검사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인증검사 대행기관에서 인증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인증검사 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④ 인증검사 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수수료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⑤ 인증검사 대행기관은 인증검사 대행업무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검사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인증검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제4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5. 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검사 대행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인증검사 대행업무를 계속한 경우
- ⑦ 제6항에 따른 업무정지 등 처분절차 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41조(인증검사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인증검사에 불복하는 자는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적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3. 5. 16.>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개정 2023. 5. 16.>

[제목개정 2023. 5. 16.]

제15장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제142조(설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 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한국 선원복지고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3. 3. 23.>

② 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제143조(사업)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선원복지시설의 설치·운영

2. 국내외 선원의 취업 동향과 고용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3. 선원의 구직 및 구인 등록

4.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선원의 직업안정업무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선원 관련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부대사업

② 센터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제144조(임원) ① 센터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 이사장과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임원의 자격, 선임, 임기, 직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5조(이사회) ① 센터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센터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6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는 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센터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수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7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센터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③ 센터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제148조(지도·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장부, 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1.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한 경우
2. 회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예산을 집행한 경우
3. 제1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을 한 경우

제149조(「민법」의 준용) 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6장 보칙

제151조(서류의 선박 내 게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박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적은 서류
2. 송환 절차, 유기구제보험등의 가입 여부, 유기 구제비용의 청구·지급 절차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
3. 제56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가입 여부, 체불임금의 청구·지급 절차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
4. 재해보상보험등의 가입 여부, 보험금의 청구·지급 절차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박 내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적은 서류
2. 제43조제1항에 따른 선원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된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서류

[전문개정 2016. 12. 27.]

제152조(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 ①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과 재해보험사업자등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 보험금(이하 “유기구제비용등”이라 한다)을 지급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유기구제비용등을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구제비용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가 개설된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유기구제비용등만이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기구제비용등의 신청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9. 16.]

[종전 제152조는 제152조의2로 이동 <2025. 9. 16.>]

제152조의2(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 ① 실업수당, 퇴직금, 송환비용, 송환수당, 유기 구제비용 또는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6. 12. 27., 2025. 9. 16.>

② 제15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25. 9. 16.>

[제152조에서 이동, 종전 제152조의2는 제152조의3으로 이동 <2025. 9. 16.>]

제152조의3(입금채권 등의 우선변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선박소유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0. 22.>

1. 제52조에 따른 임금
2. 제55조에 따른 퇴직금
3.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례비
4. 그 밖에 선원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선박소유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0. 22.>

1. 제52조에 따른 임금의 최종 4개월분
2.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최종 4년분
3.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례비

[본조신설 2016. 12. 27.]

[제152조의2에서 이동 <2025. 9. 16.>]

제153조(서류 보존) 선박소유자는 선원명부, 선원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및 재해보상 등에 관한 서류를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54조(외국정부에 대한 협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정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한민국의 선박소유자나 선원과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선원당직국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선박소유자나 선장이 선원당직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자격증명서를 지니지 아니한 선원을 승무시킨 경우
2. 선원당직국제협약에 따라 적합한 선원자격증명서를 지닌 사람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를 선원자격증명서를 지니지 아니한 사람이 수행하도록 해당 선장이 허용한 경우
3. 선원당직국제협약에 따른 적합한 선원자격증명서를 지니지 아니한 사람이 그 선원자격증명서를 지닌 사람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무한 경우

제155조(수수료) ① 이 법에 따른 증서의 발급, 공인, 인증검사 등을 신청하거나 제76조제2항·제85조제3항에 따른 선박조리사 및 의료관리자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4조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인터넷으로 승선·하선 공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 1. 6.>

제156조(시효의 특례) 선원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재해보상청구권을 포함한다)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제157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용)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5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센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159조(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이 법에 따른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 29.>

제17장 벌칙

제160조(벌칙) 선장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해원이나 선박 내에 있는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2. 18.>

제161조(벌칙) 제11조를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떠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선장: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떠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해원: 3년 이상의 징역
3.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떠나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선원: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4.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선박 또는 화물에 손상을 입힌 선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문개정 2015. 1. 6.]

제162조(벌칙) 제12조 본문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선장: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선장: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3. 선박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선장: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문개정 2015. 1. 6.]

제163조(벌칙) 선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6.>

1. 제13조를 위반하여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선박을 유기(遺棄)하였을 때
3. 외국에서 해원을 유기하였을 때

제164조(벌칙) 선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6., 2021. 6. 15.>

1. 제7조제1항에 따른 출항 전의 검사등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 1의2. 제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한 때

- 1의3.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제8조를 위반하여 미리 정하여진 항로를 변경하였을 때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제10조를 위반하여 선박을 떠났을 때
5. 제16조에 따른 항해의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6.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신 인도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7.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송환을 거부하였을 때
8. 제20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었을 때
9. 제21조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하였을 때
10. 제82조제6항을 위반하여 선원의 부상·질병 치료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

제165조(벌칙) ① 해원이 직무수행 중 상사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6.>

② 제25조를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쟁의행위를 지휘하거나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2. 쟁의행위 모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선동한 사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제2항의 경우 해당 쟁의행위가 선박소유자(그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선원의 이익에 반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한 것일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66조(벌칙) 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선장의 허가 없이 선박을 떠났을 때
2.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장이 인명, 선박 또는 화물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 상사의 직무상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제167조(벌칙)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6.>

1. 선박소유자가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 및 그 밖의 징벌을 하였을 때
2. 선박소유자가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3.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제25조의2를 위반하였을 때

제168조(벌칙) ① 선박소유자(제5호의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외의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6., 2020. 2. 18., 2023. 10. 24.>

1. 제25조의4제6항을 위반하였을 때

- 1의2.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 1의3. 제55조의2를 위반하였을 때
2. 제5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월 고정급, 생산수당 또는 비율급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제6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제91조제2항 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5. 제111조를 위반하여 선원 또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직업소개, 모집 및 채용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았을 때
- ② 제1항제1호의2부터 제3호까지의 벌칙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2023. 10. 24.>

제169조(벌칙) 선박소유자가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임금의 최저액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제170조(벌칙)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31., 2015. 1. 6., 2020. 2. 18., 2021. 6. 15., 2024. 10. 22.>

1. 제30조를 위반하여 강제저축 등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2.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제55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 3의2.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실습시간을 초과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휴식시간 또는 휴일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실습을 실시한 때
4. 제62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하였을 때
5. 제6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하였을 때
6.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유급휴가급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7.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원에게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하였을 때
8. 제91조제1항을 위반하여 16세 미만인 사람을 선원으로 사용하였을 때
9. 제92조제1항을 위반하여 18세 미만의 선원을 야간작업에 종사시켰을 때
10. 제9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요양하게 하지 아니하였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11. 제94조제2항(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위반하여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요양을 받는 선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12. 제96조를 위반하여 상병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13. 제97조를 위반하여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14. 제9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유족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15. 제100조를 위반하여 장례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16. 제101조를 위반하여 행방불명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17. 제1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였을 때

제171조(벌칙) 제110조를 위반하여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6.>

제172조(벌칙) 선박소유자가 제7조제4항 또는 제8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6.>

제173조(벌칙) ① 선박소유자,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 또는 재해보험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6., 2016. 12. 27., 2020. 2. 18., 2021. 6. 15.>

1. 제37조를 위반하여 실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원을 송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송환비용을 미리 내도록 요구하였을 때
4. 제39조를 위반하여 송환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5. 제4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기구제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 5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유기 구제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6. 제54조를 위반하여 승무선원의 부상이나 질병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7.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원의 체불임금 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거나 기금을 조성하지 아니하였을 때
8. 제6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하였을 때
9. 제6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승무정원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승무정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하였거나 결원을 충원하지 아니하였을 때
10. 제66조에 따른 선원의 자격요건 및 정원을 위반하였을 때
- 10의2.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여객선선장으로 승무시켰을 때
11.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비원을 확보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예비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12. 제76조제1항에 따른 선내 급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조리사를 선박에 승무시키지 아니하였을 때
13. 제84조를 위반하여 의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하였을 때

14. 제8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에 의료관리자를 두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관리자 자격증을 가진 선원을 의료관리자로 선임하지 아니하였을 때
15. 제86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에 응급처치 담당자를 두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선원을 응급처치 담당자로 선임하지 아니하였을 때
16. 제102조를 위반하여 소지품 유실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17. 제10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는 재해보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가입 금액을 승선평균임금 미만으로 가입하였을 때
18.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6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재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 ② 제1항제6호 및 제11호의 벌칙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17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6. 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에 따른 선원근로계약의 신고를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원수첩을 발급받거나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또는 정정을 받은 사람
3. 다른 사람의 선원수첩이나 선원신분증명서를 대여받거나 사용한 사람
4. 제50조를 위반하여 선원수첩이나 선원신분증명서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람
- 4의2. 제112조제9항제2호를 위반하여 16세 미만인 사람을 계약상대자가 고용할 선원으로 알선한 선원관리사업자
- 4의3. 제112조제1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선원관리사업자
5. 제124조제2항 전단 또는 제133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해정지나 출항정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175조(벌칙) ① 선박소유자가 제27조제1항, 제53조, 제91조제3항 또는 제93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53조의 벌칙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176조(벌칙) 선원근로감독관이거나 선원근로감독관이었던 사람이 제128조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6.>

제17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15.>

1. 제29조를 위반하여 위약금 등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선박소유자
2. 제31조를 위반하여 선원에 대한 전차금이나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한 선박소유자
3. 제43조를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서를 작성·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선원에게 선원근로계약서 1부를 주지 아니한 자
4. 제1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취업규칙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고한 자
5.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규칙의 작성 절차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아니한 자
- 5의2. 제120조의2를 위반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따르지 않은 선박소유자
6. 제121조를 위반하여 취업규칙 변경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137조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선박소유자
8. 제138조제8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되돌려 주라는 명령을 위반하여 되돌려 주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9. 제153조를 위반하여 3년간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제17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부터 제170조까지, 제172조, 제173조, 제174조제1호·제2호, 제175조 또는 제17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6. 12. 27.]

제179조(과태료) ① 선박소유자(선박소유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선박소유자의 배우자, 선박소유자의 4촌 이내의 혈족, 선박소유자의 4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25조의3을 위반하여 선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 10. 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5. 1. 6., 2023. 10. 24.>

1. 제15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선장
2. 제15조제2항에 따라 여객에게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키지 아니한 선장
3.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할 때 해원의 휴식시간에 지장을 준 선장
- 3의2. 제25조의4제2항·제4항·제5항 및 제7항을 위반한 선박소유자
4. 제63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5. 제82조제7항을 위반하여 선원에게 제복을 제공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6. 제12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선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5. 1. 6., 2016. 12. 27., 2017. 11. 28., 2021. 6. 15., 2023. 10. 24.>

1. 제12조 본문 또는 제14조 본문에 따른 통보, 제18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109조제1항·제2항 또는 제151조를 위반한 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사람
4. 제2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5.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5의2. 제4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리지 아니한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
6.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선원명부에 적지 아니하거나 선원명부의 공인을 받지 아니한 자
- 6의2.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해외취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선원 혹은 선원관리사업자
- 6의3.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선원의 여권 등 신분증을 대리하여 보관한 선박소유자
- 6의4.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서류 제출 또는 제2항의 출입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6의5. 제56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62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휴식시간 및 시간외근로 관련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선장에게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8. 삭제<2015. 1. 6.>
9. 제77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차별 급식을 한 선장
10. 제82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원의 직무상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 해양항만관청에 즉시 보고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11. 제82조제5항을 위반한 선박소유자
12.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서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선원으로 승무시킨 선박소유자
- 12의2. 제10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리지 아니한 재해보험사업자등
13. 제1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원관리사업의 위탁사실과 내용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13의2. 제112조제10항에 따른 출석 및 서류제출의 요구, 실태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4. 제1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5. 제126조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선박 또는 사업장 출입을 거부·기피·방해한 사람, 장부나 서류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 또는 서류를 제출한 사람 또는 거짓 진술을 한 사람
16. 제12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게시한 선박소유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5. 1. 6., 2023. 10. 24.>

1. 제58조를 위반하여 임금대장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임금 지급 시마다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복을 입지 아니한 선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23. 10. 24.>

제180조(선장직무대행자에 대한 적용) 이 장 중 선장에게 적용할 규정은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제11024호, 2011. 8.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
2. 제2조제1호, 제9조 단서, 제27조제2항, 제41조, 제42조, 제43조제1항, 제54조,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8조, 제69조, 제75조,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8조, 제89조, 제106조, 제107조, 제113조, 제114조, 제123조, 제129조, 제132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제151조의 개정규정은 해사노동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
3. 제136조 및 제13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해사노동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다만, 여객선과 산적운반선(散積運搬船)은 해사노동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조제1호, 제54조, 제60조, 제62조, 제68조, 제69조, 제75조, 제76조제2항, 제106조, 제129조, 제132조 및 제151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3조제1호, 제50조, 제55조, 제60조, 제66조, 제67조, 제73조, 제74조제2항, 제98조, 제114조, 제119조 및 제123조를 적용한다.

제3조(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의 발급을 위한 사전 준비행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해사노동협약이 발효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이 법 시행 전에 미리 행할 수 있다.

1. 제14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검사 대행기관 지정 및 협정 체결
2. 제13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및 제1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

② 제1항에 따라 행하여진 각종 행정처분과 준비행위는 이 법에 따라서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선원근로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퇴직금, 수당, 송환비용, 유급휴가비 또는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신고·인가 또는 자격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증이나 건강진단서를 지니고 있거나 선원 교육훈련을 받은 선원은 이 법에 따라 자격증, 건강진단서 또는 선원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선원법」 제97조에 따른 장해보상,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일시보상 또는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유족보상

②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선원법」 제54조”를 “「선원법」 제59조”로 한다.

③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선원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을 “「선원법」 제3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④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호나목 중 “「선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담당자”를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 중 “「선원법」 제3조제1호”를 “「선원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업무

제8조제3호 중 “선원법 제100조제3항의 규정”을 “「선원법」 제110조”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선원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141호, 2011. 12. 31.>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1[^] 까지 생략

1[&] 법률 제11024호 선원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2항제1호 중 “ 제41조 ” 를 “ 제44조 ” 로 한다.

제170조제11호 중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 를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 로 한다.

1* 부터2*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1188호,2012. 1. 17.>

이 법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70호,2012. 2. 1.> (근로기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1024호 선원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3항 중 “ 보호휴가 ” 를 “ 휴가 ” 로 한다.

제70조제4항 중 “ 제69조제3항에 따라 보호휴가로 ” 를 “ 제69조제3항에 따른 휴가로 ” 로 한다.

부칙 <제11690호,2013. 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2>까지 생략

<603>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제3조제1항제3호·제2항, 제13조 단서, 제14조 본문,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제1항제5호·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5항, 제25조제3호, 제38조제3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제2항 본문, 제4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제46조제2항, 제49조, 제59조 후단, 제60조제4항 후단, 제61조, 제62조제3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제3항·제4항, 제65조제2항, 제66조, 제68조제1항제4호, 제69조제5항, 제70조제4항, 제71조제3호, 제74조제1항·제3항, 제76조제1항 전단, 제79조제1항제8호, 제81조제3항, 제82조제2항·제3항·제5항, 제83조제1항,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호,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 제4항, 제86조제2항, 제87조제1항·제2항, 제9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1호, 같은 조 제6항, 제108조제2항, 제110조, 제113조제2항, 제114조, 제115조제2항, 제117조제2항 단서, 제1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29조제3항, 제136조제1항·제2항, 제1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138조제1항·제3항·제4항·제6항, 제1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0조제2항·제5항·제7항, 제141조제2항·제3항, 제155조 및 제158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8호, 제4조제1항, 제4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45조제4항, 제47조제1호, 제48조제6항, 제59조 전단 및 후단, 제65조제3항 단서, 제68조제2항, 제76조제3항, 제7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9조제2항, 제80조, 제81조제1항·제2항, 제85조제3항, 제88조제1항·제2항, 제89조, 제92조제1항 단서,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9조제1항·제2항, 제112조제1항, 제113조제1항, 제114조, 제115조제1항·제2항, 제116조제1항·제2항, 제117조제1항·제3항, 제118조제1항·제2항, 제12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26조제5항,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3조제3항·제5항, 제134조, 제137조제4항, 제138조제1항·제3항·제4항·제8항, 제1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제141조제1항·제2항, 제142조제1항·제4항, 제143조제2항, 제144조제3항, 제14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1조제2항, 제1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8조제1항 및 제169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25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60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862호, 2013. 6. 4.> (화학물질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 까지 생략

2!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2@ 부터 2(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2538호, 2014. 3. 24.> (선박직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기관사”를 “기관사, 전자기관사”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2844호, 2014. 11. 1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1>까지 생략

<232>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본문 및 단서 중 “해양경찰관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23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000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원복지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선원복지기본계획 및 선원인력수급계획은 제10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원정책기본계획 중 해당 분야의 기본계획으로 본다.

부칙 <제13186호, 2015. 2.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법」 제32조”를 각각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4508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기구제보험등의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항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기구제보험등 서류 등의 게시에 관한 적용례) 제15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항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에 관한 적용례) 제15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임금채권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임금채권 및 퇴직금 채권과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권리 간의 변제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다.

1. 질권·저당권
2.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3.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제5조(송환보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항하여 항해 중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이 도착항에 입항할 때까지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송환 관련 서류의 비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항하여 항해 중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이 도착항에 입항할 때까지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지급 보장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원이 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 보장 범위에 대해서는 제5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한 선원
2. 이 법 시행 이후에 퇴직한 선원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기간이 3개월 이하인 선원
- ② 이 법 시행 이후 퇴직한 선원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기간이 3개월 초과 4개월 미만인 선원이 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 보장 범위에 대해서는 제5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에 받지 못한 임금으로 한정한다.
- ③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한 퇴직금의 지급 보장 범위에 대해서는 제5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803호, 2017. 4. 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2>까지 생략

<243>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본문 및 단서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를 각각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24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129호, 2017. 1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내 불만 처리절차 관련 서류 게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항해 중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이 도착항에 입항할 때까지는 제12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914호, 2018. 12. 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81호, 2019. 1. 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02호, 2020. 1. 29.> (항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9조 중 “ 「항만법」 제89조 ”를 “ 「항만법」 제26조 ”로 한다.

3) 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7032호,2020. 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286호,2021. 6.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44조의2 및 제179조제2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취업 신고의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 국적 선박소유자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원 및 선원관리사업자를 통해 외국 국적 선박에 취업하는 선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병보상 지급의 적용례) 제9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중인 선원에 게도 적용한다.

부칙 <제18425호,2021. 8. 17.>(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을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으로 한다.

2# 부터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8697호,2022. 1. 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15호,2023. 5. 16.>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부칙 <제19498호,2023. 6. 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72호,2023. 10.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선내 괴롭힘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27호,2024. 1.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보상 지급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유족보상 또는 행방불명보상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 지급의 제한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31호,2024. 2. 6.> (화학물질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 유독물질 ” 을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 로 한다.

⑪부터 3!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525호, 2024. 10. 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54호, 2025. 9. 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34호, 2025. 11. 11.>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호 중 “ 근로자의 날 ” 을 “ 노동절 ” 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선원법 시행령

[시행 2026. 3. 17.] [대통령령 제36173호, 2026. 3. 10.,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051 - 773 - 57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4. 27., 2009. 6. 9.>

제2조(선원이 아닌 사람)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1. 12.>

1. 「선박안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
 2. 선박의 수리를 위하여 선박에 승선하는 기술자 및 작업원
 3. 「도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
 4.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위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5. 실습선원
 6. 선박에서의 공연(公演)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연예인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선박소유자 단체 및 선원 단체의 대표자와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본조신설 2014. 4. 15.]

제3조(기타 직원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1998. 9. 17., 2008. 2. 29., 2009. 6. 9., 2012. 2. 3., 2013. 3. 23., 2014. 4. 15.>

1. 어로장
2. 사무장
3. 의사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와 동등이상의 대우를 받는 해원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

제3조의2(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①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1998. 9. 17., 2012. 2. 3.>

1. 시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
2.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3. 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4.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5. 일·주·월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제에 의하여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에 있어서 도급제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당해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마감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7. 임금이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2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6호의 방법에 의하여 각각 산정된 금액의 합산액

②제1항에서 “1일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란 법 제60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단체협약 또는 선원과 선박소유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월의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월의 소정근로일수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시간을 말한다. 다만, 임금체계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항해중인 항해당직자의 소정근로시간은 항해중인 항해당직자외의 선원의 소정근로시간과 같아야 한다.<개정 1998. 9. 17., 2012. 2. 3.>

[본조신설 1991. 1. 29.]

[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5로 이동<1991. 1. 29.>]

제3조의3(승선평균임금의 산정방법) ①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승선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은 당해 기간 및 임금의 총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2012. 2. 3.>

1. 법 제54조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2. 선원이 될 목적으로 실습을 위하여 승선하는 기간

②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또는 수당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한하여 임금의 총액에 산입한다.<개정 1996. 8. 8., 2008. 2. 29., 2012. 2. 3., 2013. 3. 23.>

③일용선원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업종별로 정하는 금액을 승선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 1996. 8. 8., 2008. 2. 29., 2013. 3. 23.>

④법 제2조제12호,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6. 8. 8., 2008. 2. 29., 2012. 2. 3., 2013. 3. 23.>

[본조신설 1991. 1. 29.]

제3조의4(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조정) ①법 제96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병보상등을 지급할 선원에 대하여 적용할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은 그 선원이 소속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는 선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1인당 1월 평균액(이하 “평균액”이라 한다)이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에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는 선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 평균액의 100분의 105이상이 되거나, 100분의 95이하로 된 경우에는

그 변동비율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된 금액으로 하되,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2회이후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증감을 위한 조정은 직전회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통상임금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2. 2. 3.>

②제1항의 경우 그 선원이 소속한 사업장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 선원의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당시의 같은 규모의 업종·사업장 및 선박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그 선원과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는 선원이 없는 때에는 그와 유사한 직무에 종사하는 선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평균액의 변동비율에 의한다.

④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 선원에 대한 법 제37조 및 제55조에 따른 실업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 2012. 2. 3.>

[본조신설 1991. 1. 29.]

[제목개정 2012. 2. 3.]

제3조의5(공동경비)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경비”란 첫출어부터 조업종료까지 발생하는 직접 경비를 말한다. <개정 1991. 1. 29., 2012. 2. 3.>

[본조신설 1988. 9. 24.]

[제3조의2에서 이동<1991. 1. 29.>]

제3조의6(지방해양항만관청) 법 제2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장(이하 “지방해양항만관청”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지방해양수산청장
2.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3. 해양수산사무소장

[본조신설 2017. 1. 17.]

[종전 제3조의6은 제3조의7로 이동 <2017. 1. 17.>]

제3조의7(선장의 선박 조종 지휘를 대행할 수 있는 직원) 법 제9조제2항에서 “1등항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5. 7. 6.>

1. 1등항해사
2. 운항장
3.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1등항해사 또는 운항장의 승무자격 이상의 자격을 갖춘 직원

[본조신설 2014. 4. 15.]

[제3조의6에서 이동 <2017. 1. 17.>]

- 제4조(재외국민송환비용의 부담 및 상환)**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송환에 쓰인 비용은 송환된 자가 부담하며, 그 비용은 송환에 쓰인 운임·식비·의료비 기타 비용으로 한다.
- ②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환된 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송환에 쓰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즉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제2장 선원근로계약

- 제5조(유기구제보험 등의 가입)** ①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를 말한다. <개정 2014. 4. 15., 2017. 1. 17.>
- ②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4. 15., 2017. 1. 17.>
1.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2조에 따른 선주상호보험조합(이하 “선주상호보험조합”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손해보험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보험회사 및 외국보험회사가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선원의 유기 구제비용(이하 “유기 구제비용”이라 한다) 보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보험업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손해보험
 3. 선박소유자 단체가 유기 구제비용 보장을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소속업체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 유기 구제비용 보장을 목적으로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소속업체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
 5. 국제적인 공제 업무를 운영하는 자의 공제로서 유기 구제비용을 보증할 능력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제
- ③ 삭제 <2017. 1. 17.>
- [전문개정 2012. 2. 3.]
- [제목개정 2017. 1. 17.]

- 제5조의2(유기 구제비용의 청구와 지급)** ① 법 제4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1. 선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3.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4. 선원이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 ② 법 제4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유기 구제비용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을 말한다.

③ 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이하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은 선원 또는 법 제42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대리인(이하 “지정대리인”이라 한다)이 유기 구제비용을 청구한 경우 그 청구 내용에 따라 선원 또는 지정대리인에게 유기 구제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지정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그 유기 구제비용을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9., 2026. 3. 10.>

[본조신설 2017. 1. 17.]

제5조의3(유기사실인정) ① 법 제42조의2제4항에 따라 유기 구제비용을 청구하려는 선원 또는 지정대리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인정(이하 “유기사실인정”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유기사실인정의 여부를 결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 17.]

제6조(선원명부의 공인면제) 법 제4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5. 9. 30., 2007. 4. 27., 2007. 9. 28., 2007. 10. 31., 2010. 4. 20., 2012. 2. 3., 2023. 1. 10.>

1.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에 승무하는 부원
2. 「수산업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에 승무하는 부원
3.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평수구역(이하 “평수구역”이라 한다) 안을 운항하는 부선에 승무하는 선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관공선에 승무하는 선원

[본조신설 2001. 6. 29.]

[제목개정 2012. 2. 3.]

제7조 삭제 <1998. 9. 17.>

제8조(선원수첩의 발급절차)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선원수첩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선박소유자·「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장(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이라 한다)·법 제112조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선원관리사업자”라 한다)·「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주재국 대한민국영사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8. 9. 24., 1991. 1. 29., 1996. 8. 8., 1997. 5. 24., 1998. 9. 17., 2004. 1. 29., 2005. 9. 30., 2008. 2. 29., 2012. 2. 3., 2013. 3. 23., 2017. 1. 17.>

② 외국인이 대한민국선박에 고용되어 선원수첩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의 본국 정부(우리나라에 주재하는 그의 본국 영사를 포함한다)로부터 그가 승선에 적합하다는 사실

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 2. 3.>

③선원수첩을 소지한 자는 법 제49조에 따른 재발급신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원수첩의 발급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05. 9. 30., 2012. 2. 3.>

[제목개정 2012. 2. 3.]

제9조(미성년자의 선원수첩 발급신청) 미성년자가 선원수첩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3.>

[제목개정 2012. 2. 3.]

제10조(선원보증서에 의한 선원수첩의 갈음) ①법 제4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원”이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1998. 9. 17., 2001. 6. 29., 2005. 9. 30., 2008. 2. 29., 2012. 2. 3., 2013. 3. 23.>

1. 외국 영토에 기항하지 아니하고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부원. 다만, 당직부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2. 국내항 사이만을 운항하는 여객선에 승무하는 부원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
3. 평수구역 안을 운항하는 부선에 승무하는 선원
4. 외국인 선원

② 삭제 <1999. 6. 8.>

[제목개정 2001. 6. 29.]

제11조(선원수첩의 반환) 다른 사람의 선원수첩을 가지고 있는 자는 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장이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5. 9. 30.]

제12조(선원수첩의 서식 등) 선원수첩의 서식과 선원수첩의 발급·정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2. 2. 3., 2013. 3. 23.>

[본조신설 2005. 9. 30.]

제13조(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등) ①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방해양항만관청(해양수산사무소장의 경우에는 선원신분증명서 발급장비를 갖춘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으로 한정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2. 3., 2017. 1. 17.>

②미성년자가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3.>

③선원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자가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발급신청을 하거나 법 제49조에 따라 재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또는 기재사항의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지하고 있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3.>

④선원신분증명서 발급·정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2. 2. 3., 2013. 3. 23.>

[본조신설 2005. 9. 30.]

[제목개정 2012. 2. 3.]

제14조(외국인에 대한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법 제4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영주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 2. 3., 2018. 9. 18.>

[전문개정 2005. 9. 30.]

[제목개정 2012. 2. 3.]

제15조(선원신분증명서의 규격 및 수록내용) ①법 제48조제7항에 따른 선원신분증명서의 규격은 가로 8센티미터 6밀리미터, 세로 5센티미터 4밀리미터로 한다. <개정 2012. 2. 3.>

②선원신분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기되어야 한다.

1. 앞면 : 증명서 번호, 성명, 성별, 국적, 생년월일, 출생지, 주민등록번호, 신체특징, 발급지, 발급일, 기간만료일, 사진, 서명
2. 뒷면 : 발급관청, 생체인식정보(지문), 기계판독자료

③선원신분증명서의 재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2005. 9. 30.]

제16조(승무경력증명서의 발급)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승무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불리한 기호나 표시를 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 2. 3.>

[제목개정 2012. 2. 3.]

제3장 임금

제17조(임금의 지급) ① 법 제52조제2항 단서에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 근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근속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되는 장려금·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3.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② 선박소유자는 법 제52조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급여명세서를 선원에게 주어야 한다.

1. 임금의 금액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구성항목에 관한 사항

3. 적용환율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 2. 3.]

제17조의2(기일 전 지급) 법 제5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란 선원이 나 그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2.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상 하선하게 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2. 2. 3.]

제17조의3(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5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1. 12.]

제17조의4(지연이자의 적용 제외 사유) 법 제5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선박소유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선박소유자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3.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중국판결
 -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으로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5.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법 제4조에 따른 선원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 1. 12.]

제17조의5(명단 공개의 내용·기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개한다.

1. 법 제55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임금등(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은 선박소유자(이하 “체불선박소유자”라 한다)의 성명·나이·상호·주소(체불선박소유자가 법

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를 말한다)

2.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등 체불액

-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3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단 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1. 12.]

제17조의6(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의 제외 대상) 법 제55조의4제1항 단서에서 “체불선박소유자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 1. 체불선박소유자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체불선박소유자가 자연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2. 체불선박소유자가 법 제55조의4제2항에 따른 소명 기간 내에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 3. 체불선박소유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4. 체불선박소유자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 5. 체불선박소유자가 체불 임금등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체불 임금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 계획과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법 제55조의4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법 제55조의4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가 체불선박소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1. 12.]

제17조의7(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절차 등) ① 법 제55조의5제1항 본문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이하 “임금등체불자료”라 한다)를 요구하는 자(이하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요구자의 성명·상호·주소(요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주소를 말한다)
- 2. 요구하는 임금등체불자료의 내용과 이용 목적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임금등체불자료를 서면이나 전자적 파일 형태로 작성하여 요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임금등체불자료를 제공한 후 제17조의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금등채불자료의 제공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1. 12.]

제17조의8(임금등채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법 제55조의5제1항 단서에서 “채불선박소유자의 사망·폐업으로 임금등 채불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채불선박소유자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채불선박소유자가 자연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채불선박소유자가 임금등채불자료의 제공일 전까지 채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3. 채불선박소유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채불선박소유자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5. 임금등채불자료의 제공일 전까지 채불선박소유자가 채불 임금등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채불 임금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 계획과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채불 임금등 청산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1. 12.]

제18조(채불임금의 지급사유) 법 제56조제1항 본문에서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2.

2. 3., 2017. 1. 17.>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하 “파산선고등”이라 한다)
2. 제18조의2에 따른 지방해양항만관청의 도산등사실인정

[본조신설 2005. 9. 30.]

제18조의2(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절차) ①지방해양항만관청은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선박소유자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선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선박소유자가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하 “채불임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7. 1. 17.>

1.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 가. 그 사업의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다. 그 사업의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2.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불임금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선박소유자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나. 선박소유자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선원이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본조신설 2005. 9. 30.]

제18조의3(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종류) ①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선박소유자(선박소유자단체를 포함한다)가 가입하거나 조성하여야 하는 보험·공제 또는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4. 27., 2011. 1. 24., 2012. 2. 3., 2014. 4. 15., 2018. 3. 30.>

1. 선주상호보험조합이 운영하는 손해보험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보험회사 및 외국보험회사가 선원의 임금채권 보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손해보험

3. 선박소유자 단체가 선원의 임금채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소속업체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

4. 선박소유자 단체가 선원의 임금채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 제10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소속업체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기금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 선원의 임금채권 보장을 목적으로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소속업체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 또는 기금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 선원의 임금채권 보장을 목적으로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 또는 기금

②제1항제3호·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공제업자는 공제금의 조성기준 및 지급요건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2. 2. 3., 2013. 3. 23., 2014. 4. 15., 2018. 3. 30.>

③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기금의 조성기준 및 지급요건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2. 2. 3., 2013. 3. 23., 2014. 4. 15., 2018. 3. 30.>

[본조신설 2005. 9. 30.]

제18조의4(체불임금의 청구와 지급) ①법 제56조에 따라 체불임금을 지급받으려는 선원은 해당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파산선고등이 있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보험·공제 또는 기금을 운영하는 선주상호보험조합, 보험업자, 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이하 “보험업자·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라 한다)에게 체불임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3., 2014. 4. 15., 2017. 12. 29.>

②보험업자·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체불임금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불임금을 청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체불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15., 2017.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불임금의 청구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9.>

[본조신설 2005. 9. 30.]

제18조의5(체불임금 지급사유의 확인 등) ①제18조의4에 따라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의 확인을 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7. 1. 17., 2017. 12. 29.>

1.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 및 그 신청일
2. 퇴직일
3. 최종 4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4년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②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해당 선박소유자·관리인 등에게 파산선고등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2. 3., 2017. 1. 17.>

[본조신설 2005. 9. 30.]

제18조의6(체불임금 청구권의 대위) 보험업자·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가 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선원의 체불임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청구권의 행사 및 확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3., 2014. 4. 15., 2017. 12. 29.>

[본조신설 2005. 9. 30.]

제19조(어선원의 임금에 대한 특례) ① 삭제 <1988. 9. 24.>

② 삭제 <2005. 9. 30.>

③ 삭제 <1988. 9. 24.>

④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의 비율급 및 생산수당의 정산은 첫출어부터 조업종료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하되, 그 기간이 1월미만인 때에는 1월단위로 정산하고, 그 기간이 6월이상인 때에는 6월단위로 정산한다. 다만, 그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에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산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1. 1. 29., 2012. 2. 3.>

⑤ 삭제 <1988. 9. 24.>

제19조의2(어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준) ①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어선원의 통상임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2. 2. 3.>

1.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되 임금중 월고정급의 비율이 큰 업종 또는 선박으로서 어선원과 어선소유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35퍼센트로 한다.
2.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제1호외의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40퍼센트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업종 또는 선박의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45퍼센트로 한다.

②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어선원의 승선평균임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개정 2012. 2. 3.>

1.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되 임금중 월고정급의 비율이 큰 업종 또는 선박으로서 어선원과 어선소유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65퍼센트로 한다.
2.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제1호외의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70퍼센트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업종 또는 선박의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75퍼센트로 한다.

③ 삭제 <1998. 9. 17.>

[본조신설 1991. 1. 29.]

제20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법 제5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2. 3.>

1. 선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고용연월일 및 직책
 2. 임금 및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3.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
 4. 시간외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5. 임금의 내역별 금액
 6. 법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금액
- [전문개정 1998. 9. 17.]

제20조의2 삭제 <1998. 9. 17.>

제4장 선원의 승무자격

제21조(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선박) ①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총톤수 500톤이상 또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주기관 추진력 750킬로와트이상의 선박을 말한다. 다만, 평수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예선(曳船) 및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면비행선박은 제외한다. <개정 1987. 8. 13., 1998. 7. 1., 1998. 9. 17., 2001. 6. 29., 2005. 9. 30., 2012. 2. 3., 2014. 4. 15., 2017. 12. 29., 2023. 10. 17., 2024. 1. 16.>

②법 제6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화물적재선박”이란 통등에 넣지 아니한 석유류 액체화학물질 또는 액화가스를 그대로 싣는데 전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평수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을 제외한다.<개정 1998. 9. 17., 2012. 2. 3.>

③법 제6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시설 중 구명정·구명뗏목·구조정 또는 고속구조정을 비치하여야 하는 선박을 말한다.<개정 1998. 9. 17., 2005. 9. 30., 2007. 9. 28., 2012. 2. 3.>

④ 법 제6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을 말한다. 다만, 평수구역만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선사업 또는 도선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선박은 제외한다.<신설 2015. 7. 6.>

⑤ 법 제6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가스 등 저인화점 연료(인화점이 섭씨 60도 미만인 연료를 말한다)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을 말한다.<신설 2021. 1. 12.>

제21조의2(예비원) ①법 제6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항해선이 아닌 선박의 선박소유자가 예비원을 총승선 선원 수의 10퍼센트 이상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1997. 5. 24., 1998. 9. 17., 2008. 2. 29., 2012. 2. 3., 2015. 7. 6., 2017. 1. 17.>

1. 선박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이 3척이하인 경우. 다만, 선박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제21조제2항에 따른 위험화물적재선박

나. 「해운법」 제3조제1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

2. 지방해양항만관청의 승인을 얻어 승선할 선박을 특정하여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원의 경우

3. 평수구역만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경우

② 제1항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종류의 선박을 3척 이하 보유한 다른 선박소유자와 공동으로 해당 선박소유자와 다른 선박소유자가 고용하고 있는 총승선 선원 수의 10퍼센트 이상 예비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소유자가 고용하고 있는 총승선 선원 수의 10퍼센트 미만으로 예비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가 공동으로 확보한 예비원에 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5. 7. 6., 2017. 1. 17.>

③법 제67조제2항에서 “유급휴가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 2. 3., 2015. 7. 6.>

1. 유급휴가자

2. 선박소유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선한 자

3. 법 제116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육·훈련을 받는 자

4. 기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자

④ 휴직한 선원 및 정직중인 선원에 대하여는 예비원의 확보의무 및 임금의 지급의무에 관한 법 제6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2. 3., 2015. 7. 6.>

[본조신설 1991. 1. 29.]

제5장 선내 급식과 안전 및 보건 <개정 2015. 7. 6.>

제22조(선박조리사의 자격 등) ① 법 제7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선박조리사”란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조리사교육을 이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이하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리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선박에서 3년 이상 조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조리사교육을 이수한 사람

나. 선박에서 6년 이상 조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조리사교육을 이수한 사람

3. 「2006 해사노동협약」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선박에서의 조리과 급식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③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단급식 및 위생관리

2. 식중독 예방 및 관리

④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절차, 합격기준 및 그 밖에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4. 15.]

제22조의2(선박조리사 의무승무 대상 선박의 예외) 법 제7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항해선이 아닌 선박

2.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승무정원이 10명 미만인 선박

3. 어선

[본조신설 2014. 4. 15.]

제23조(선내급식비의 최저액결정) 법 제77조제4항 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내급식비의 최저기준액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6. 8. 8., 2001. 6. 29., 2008. 2. 29., 2012. 2. 3., 2013. 3. 23.>

제23조의2(제복 제공 대상 선박) 법 제82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란 「해운법」 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 7. 6.]

제6장 재해보상

제24조(직무상 질병의 범위) 법 제94조제1항 및 제97조에 따른 직무상 질병의 범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8. 9. 17., 2005. 9. 30., 2007. 6. 29., 2012. 2. 3.>

제25조 삭제 <2012. 2. 3.>

제26조 삭제 <2001. 6. 29.>

제27조(장해등급) 법 제97조에 따른 장해등급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를 적용한다. <개정 1995. 4. 15., 2005. 9. 30., 2008. 6. 25., 2012. 2. 3.>
 [전문개정 1991. 1. 29.]

제28조 삭제 <1991. 1. 29.>

제29조(유족의 범위) 법 제9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10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1. 6. 29., 2012. 2. 3.>

1.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녀·부모·손 및 조부모
2.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자녀·부모·손 및 조부모
3.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
4.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형제자매
5.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의 자녀 및 부모의 형제자매
6.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의 자녀 및 부모의 형제자매

[전문개정 1998. 9. 17.]

제30조(유족의 순위) ① 유족보상(장제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순위는 제29조 각호의 순서에 의하고, 제29조의 같은 호에 규정된 자 사이에 있어서는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하되,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배우자, 자녀 및 부모는 같은 순위로 하며, 부

모에 있어서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개정 1998. 9. 17., 2014. 4. 15.>

②선원이 유언 또는 선박소유자에게 대한 통보로서 제2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③태아는 제29조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한다.<개정 1998. 9. 17.>

④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자가 2인이상 있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은 그 지급받을 사람의 수에 의하여 등분하여 지급한다.<개정 1991. 1. 29.>

⑤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보상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고 같은 순위의 자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순위의 자가, 같은 순위의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자가 이를 승계한다.<개정 1998. 9. 17.>

제31조(피부양자의 범위등)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행방불명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부양자의 범위 및 순위에 관하여는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1. 1. 29., 2012. 2. 3.>

제31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재해보상 지급의 제한) ① 법 제103조의2제1항에 따라 선원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을 판단할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② 법 제103조의2제1항에 따라 선원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보상제한대상자”라 한다)에 대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양육책임 이행과 관련한 심의를 청구하려는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03조의2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을 청구한 자가 법 제99조에 따른 유족보상 또는 법 제101조에 따른 행방불명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보상제한대상자의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으면 보상제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보상제한대상자로부터 양육책임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조사한 후 그 결과를 제2항에 따른 청구서 및 첨부서류와 함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재해보상 지급의 제한 여부와 감액 비율을 심의·결정하고, 그 결과를 선박소유자, 보상제한대상자 및 지방해양항만관청에 통지해야 한다.

⑤ 선박소유자는 제4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 보상제한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제한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재해보상 감액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보상제한대상자와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 같은 순위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그 순위자에게 전액 지급하고, 같은 순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2. 보상제한대상자와 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 다음 순위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그 순위자에게 전액 지급하고, 다음 순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본조신설 2024. 7. 23.]

제32조(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 법 제10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3. 30.>

1. 선주상호보험조합이 운영하는 손해보험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보험회사 및 외국보험회사가 선원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손해보험
3. 선박소유자 단체가 선원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소속 업체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 선원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소속 업체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 선원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

[전문개정 2017. 1. 17.]

제33조(재해보상의 지급) ① 법 제106조제4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를 받은 제32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지체 없이 재해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금이 확정된 날부터 10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 1. 17.]

제7장 복지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 <개정 2017. 12. 29.>

제34조(선원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07조제3항에 따른 선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선원복지, 선원인력 수급 및 교육훈련 등의 업무와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2. 선원 관련 단체의 대표자
3. 선원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위원회 위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 [본조신설 2017. 12. 29.]

제3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되, 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법 제107조제3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2. 29.]

제36조 삭제 <1998. 9. 17.>

제37조(구직·구인등록기관) 법 제10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지방해양항만관청을 말한다. <개정 2017. 1. 17.>

[전문개정 2012. 2. 3.]

제38조(선원관리사업) ① 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2. 2. 3.>

1.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선원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신고
2. 법 제44조에 따른 선원명부의 작성·비치 및 공인신청
3.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승선·하선 공인의 신청
4. 법 제51조에 따른 승무경력증명서의 발급
5. 법 제58조에 따른 임금대장의 비치와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의 기재
6. 법 제87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7. 법 제109조제2항에 따른 구인등록
8. 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9. 법 제155조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
10. 제17조제2항에 따른 선원급여명세서의 제공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2조제6항에 따라 선원관리사업자가 선박소유자(외국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선원의 인력관리업무를 위탁받는 경우에 포함시켜야 되는 동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5. 9. 30., 2008. 2. 29., 2012. 2. 3., 2013. 3. 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2조제6항에 따라 정한 사항을 선원관리사업자가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개정 1996. 8. 8., 2005. 9. 30., 2008. 2. 29., 2012. 2. 3., 2013. 3. 23.>

[전문개정 1988. 9. 24.]

제39조(선원인력수급관리제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5조제1항에 따른 선원인력 수급관리 에 관한 제도를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선원인력 수급과 관련된 기관·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인력의 수급과 관련하여 법 제107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외국인 선원의 고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12. 29.]

제40조 삭제 <1999. 6. 8.>

제41조 삭제 <1999. 6. 8.>

제42조 삭제 <1999. 6. 8.>

제43조(선원의 교육훈련) ①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선원의 교육훈련은 기초안전교육·상급 안전교육·여객선교육·당직부원교육·유능부원교육·전자기관부원교육·탱커기초교육·탱커보수교육·가스연료추진선박교육·의료관리자교육·고속선교육·선박조리사교육 및 선박보안교육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 2. 3., 2019. 10. 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 6. 29., 2008. 2. 29., 2013. 3. 23.>

③ 삭제<1999. 6. 8.>

④선원(외국인 선원을 포함한다)이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교육과정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과 동등이상의 수준이라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8. 9. 17., 1999. 6. 8., 2005. 9. 30., 2008. 2. 29., 2013. 3. 23.>

제44조(선원의 교육훈련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선원의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2. 29.>

1. 위탁업무의 내용 및 범위
2. 위탁업무의 기간 및 연장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보고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탁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2. 3.]

제44조의2(선원의 교육훈련 위탁에 대한 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선원의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위탁한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결과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2. 29.]

제45조(선원교육훈련경비의 부담) 선박소유자 또는 교육훈련을 받는 자(이하 “피교육자”라 한다)는 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01. 6. 29., 2012. 2. 3.>

1. 피교육자가 선박소유자에게 고용되어 있는 경우 : 선박소유자
2. 피교육자가 선박소유자에게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피교육자

[전문개정 1998. 9. 17.]

제46조 삭제 <1998. 9. 17.>

제47조(정부보조의 범위)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정부의 보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한다. <개정 2012. 2. 3.>

[전문개정 1991. 1. 29.]

제8장 보칙

제48조 삭제 <2005. 9. 30.>

제49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선원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법, 「근로기준법」이나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나 기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17., 2005. 9. 30., 2012. 2. 3.>

제49조의2 삭제 <2018. 5. 28.>

제49조의3(외국에서의 행정관청의 업무) ① 법 제131조에 따라 대한민국 영사(이하 이 조에서 “영사”라 한다)가 외국에서 수행하는 해양항만관청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선장의 선박 운항에 관한 보고 접수
2.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선원의 선원명부에 대한 공인
3. 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보고 접수
4.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선원의 불만신고 접수

②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무 수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결과를 영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영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통보한 사항을 관계 선원, 선박의 선장이나 해당 외국의 관계 기관에 알릴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4. 15.]

제49조의4(상세점검의 범위) 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세점검(이하 “상세점검”이라 한다)의 범위는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해사노동조합선언서의 내용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 4. 15.]

제49조의5(외국선박에 대한 조치) ① 법 제133조제3항에서 “기국에 통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선장에게 문서로 통보

가. 상세점검 결과

나. 상세점검 결과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과 관련하여 시정이 필요한 사항 및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및 선박소유자 단체에 문서로 통보

가. 상세점검 결과

나. 법 제13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선원의 불만 신고

3. 다음 각 목의 외국정부 등에 해당 외국선박의 「2006 해사노동협약」 위반사실 등을 통보(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해당 외국선박의 기국(旗國) 정부 또는 대한민국 주재 기국 영사

나. 해당 외국선박의 다음 기항지 국가의 정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선박에 대한 상세점검 결과를 기록한 상세점검보고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상세점검보고서의 사본에 해당 외국선박의 기국 정부가 보낸 모든 문서를 첨부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3조제4항에 따른 출항정지 명령 또는 출항정지 조치의 원인이 된 사항이 시정되었거나 신속하게 시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외국선박의

출항정지 명령 또는 출항정지 조치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133조제5항에서 “기국에 통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법 제133조제4항에 따른 출항정지 명령 또는 출항정지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외국선박의 기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 주재 기국 영사에게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3조제5항에 따라 제4항에 따른 통보의 조치를 한 경우 해당 기국 정부 대표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해당 기국 정부의 회신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4. 15.]

제49조의6(외국선박의 선원 불만 처리) ① 법 제134조에서 “점검을 시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법 제129조제3항에 따른 선내 불만 처리절차의 이행 지시
2. 법 제132조 및 제133조에 따른 점검의 실시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4조에 따른 신고를 한 선원 등의 신원이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4. 15.]

제50조 삭제 <2014. 4. 15.>

제50조의2(인증검사 기준) 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른 인증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선원의 근로기준에 관한 기준
2. 선원의 거주설비에 관한 기준
3. 선원의 복지후생에 관한 기준
4. 선원의 선내안전에 관한 기준
5. 선원의 건강 및 급식에 관한 기준
6. 그 밖에 선원의 노동과 관련되는 관계법령 및 국제협약에 비추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검사 기준의 세부적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2. 3.]

[종전 제50조의2는 제50조의6으로 이동 <2012. 2. 3.>]

제50조의3(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의 유효기간) ① 법 제138조제5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 및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의 기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해사노동적합증서

가. 최초인증검사를 받은 경우: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급한 날

나. 갱신인증검사를 받은 경우: 해사노동적합증서 유효기간의 만료일의 다음 날. 다만, 갱신 인증검사 기간 이전에 받은 경우에는 해당 인증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2.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급한 날

[본조신설 2012. 2. 3.]

제50조의4(협정의 체결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인증심사 대행기관과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대행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대행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
3. 협정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 국제해사기구에서 지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대행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2. 2. 3.]

제50조의5(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① 법 제146조제1항에 따른 무상 대부 및 무상 사용·수익은 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해당 국유재산 관리청과의 계약에 따른다.

②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센터가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2. 3.]

제50조의6(사업계획의 승인) ① 센터는 법 제147조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연도 개시 30일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2. 3., 2013. 3. 23.>

② 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목표, 시행방침 및 사업별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 6. 29.]

[제50조의2에서 이동 <2012. 2. 3.>]

제50조의7(서류의 선박 내 게시 등) ① 법 제1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소유자를 말한다.

1. 법 제151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의 서류: 모든 선박의 선박소유자

2. 법 제151조제1항제2호의 서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
 3. 법 제151조제2항제3호의 서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어선법」에 따른 어선은 제외한다)의 선박소유자

② 제1항에 따른 선박소유자는 법 제151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하여 선원이 이용하는 선박 내 사무실, 식당 또는 휴게실 중 한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 17.]

제50조의8(유기 구제비용 등의 지급방법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법 제15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 보험금(이하 “유기구제비용등”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가 지급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라 한다)를 개설하는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를 포함한다)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과 법 제10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자등(이하 “재해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15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유기구제비용등을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유기구제비용등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과 재해보험사업자등은 유기구제비용등의 지급대상자가 법 제15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청하면 유기구제비용등을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지급대상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3. 10.]

제50조의9(유기구제비용등에 대한 압류금지) 법 제15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법 제15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로 입금된 금액 전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 3. 10.]

제51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용) 법 제15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군함정, 경찰용 선박, 소방용 선박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1996. 8. 8., 2008. 2. 29., 2012. 2. 3., 2013. 3. 23., 2026. 3. 10.>

[제목개정 2012. 2. 3.]

제52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 17., 2021. 1. 12.>

1. 법 제65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

2.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3. 법 제1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박의 항해정지 명령, 항해정지 조치, 항구의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4. 법 제129조의2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 실시 등의 지도·점검
5. 법 제1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선박의 점검 및 확인에 관한 사항
6. 법 제13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출항정지 명령, 출항정지 조치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법 제134조에 따른 신고수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8. 법 제137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임시인증검사 및 특별인증검사에 관한 사항
9. 법 제138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8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공개·표시,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 특별인증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한다.<개정 2014. 4. 15.>

1.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선박조리사 자격을 위한 교육과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2. 법 제85조제3항에 따른 의료관리자 자격시험의 시행 및 의료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8조제1호·제2호·제4호에 따른 업무를 센터에 위탁한다.<개정 2013. 3. 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그 추진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업무의 개선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2. 3.]

제52조의2(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는 선박소유자는 법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박운항의 안전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9. 6. 8., 2005. 9. 30., 2012. 2. 3.>

1. 선원에게 선박안에서의 임무 및 선박의 특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것
2. 선장에게 선박안에서 필요한 근무지침서를 제공할 것
3. 선장에게 해상인명안전 및 해양환경보호와 관련된 국내외의 규정등 자료를 제공할 것
4. 선원을 교체할 때에는 업무의 인계·인수에 소요되는 충분한 시간을 선원에게 줄 것

[본조신설 1998. 9. 17.]

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 2. 3., 2024. 1. 16.>

[전문개정 2011. 4. 4.]

제54조(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자에 대한 선원수첩 및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등) ① 지방해양항만관청은 법 제3조에 따른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가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8조·제9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7. 5. 24., 1999. 6. 8., 2005. 9. 30., 2008. 2. 29., 2012. 2. 3., 2017. 1. 17.>

②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선원수첩을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제43조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개정 1997. 5. 24., 2008. 2. 29., 2012. 2. 3., 2017. 1. 17.>

③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2항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선박에의 승무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7. 5. 24., 2008. 2. 29., 2017. 1. 17.>

[제목개정 2005. 9. 30., 2012. 2. 3.]

제5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3.>

1. 법 제103조의2에 따른 재해보상 지급의 제한에 관한 사무
2.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선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3. 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선박 인증검사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② 지방해양항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4. 7. 23.>

1.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선원명부에 대한 공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45조에 따른 선원수첩의 발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48조에 따른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49조에 따른 선원수첩 및 선원신분증명서의 재발급에 관한 사무
- 4의2. 법 제103조의2에 따른 재해보상 지급의 제한에 관한 사무
5. 제12조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원수첩 및 선원신분증명서의 정정에 관한 사무
6. 제18조의2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에 관한 사무
7. 제18조의5에 따른 체불임금 지급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③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구직·구인등록기관 및 센터는 법 제109조에 따른 선원의 구직 등록 및 선원을 고용하려는 자의 구인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4. 7. 23.>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선원명부 및 항해일지의 기록·보관에 관한 사무
2. 법 제44조에 따른 선원명부의 작성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45조에 따른 신원보증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03조의2에 따른 재해보상 지급의 제한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7. 3. 27.]

제56조 삭제 <2025. 3. 12.>

부칙 <제11764호, 1985. 9.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및 개정) ①갑판원적임증서교부규정 및 선박의숙구목록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②선원노동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선원법 제6조제2항”을 “선원법 제4조제2항”으로 한다.

③선원근로감독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를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5조”로 한다.

제2조제1호중 “3급”을 “5급”으로 하고, 동조제2호 내지 제5호중 “4급”을 “6급 또는 7급”으로 한다.

제3조제3항중 “법 제115조”를 “법 제117조”로 한다.

제6조중 “법 제114조제3항”을 “법 제116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 (선원등록기관 및 선원교육기관의 설립준비) ①해운항만청장은 선원등록기관 및 선원교육기관의 설립위원을 각 5인씩 위촉하여 그 설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설립위원은 선원등록기관 및 선원교육기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해운항만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2225호, 1987. 8. 13.> (선박안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선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중 “선박안전법시행령 제2조제10호의”를 “선박안전법시행령 제9조제2호의”로, “동령 제2조제11호의”를 “동령 제9조제3호의”로 하고 동조제2호중 “선박안전법시행령 제2조제12호의”를 “선박안전법시행령 제9조제4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선박안전법시행령 제2조제9호의”를 “선박안전법시행령 제9조제1호의”로 한다.

⑤내지 ⑥생략

부칙 <제12526호,1988. 9. 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특정근로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이미 체결된 6월미만의 특정근로계약에 대하여는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3263호,1991. 1.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47호,1994. 12. 23.>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175>생략

<176>선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5조, 제43조제2항 및 제55조중 “교통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77>내지 <205>생략

부칙 <제14628호,1995. 4.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선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3제3항제5호”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3항제5호”로 한다.

제27조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3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로 한다.

⑨내지 ⑮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5135호, 1996. 8. 8.>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04> 생략

<105> 선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2항 내지 제4항, 제7조제3호,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23조, 제34조,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2항·제3항, 제39조제1항, 제41조제6호, 제43조제3항, 제45조, 제51조 및 제52조제1항·제2항중 “해운항만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호,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5조, 제43조제2항, 제55조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0조제2항중 “해운항만청차장”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해운항만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2 제14조 본문의 위반사항란중 “해상보안기관”을 “해양경찰관서”로 하고, 동표 제20조제1항의 위반사항란중 “교통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06> 내지 <116>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5379호, 1997. 5. 24.>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1(생략

2) 선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4호·제2항, 제13조, 제21조의2제1항제2호, 제50조, 제52조제1항, 제53조제2항·제3항 및 제54조제1항·제2항·제3항중 “지방해운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지방해운항만청출장소”를 “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로 하며, “지방해운항만청출장소장”을 “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장”으로 한다.

2! 내지3#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15830호, 1998. 7. 1.> (선박안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선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단서중 “ 선박안전법시행령 제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평수구역 ” 을 “ 선박안전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수구역 ” 으로 한다.

⑧내지 ⑪생략

부칙 <제15892호,1998. 9. 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취업규칙의 신고에 대한 특례) 소유하고 있는 어선의 총톤수의 합계가 70톤미만인 선박 소유자는 제4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취업규칙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중 “ 선원법에 의한 선원교육기관 ” 을 “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으로 한다.

②해난심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중 “ 선원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선원교육기관 ” 을 “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으로 한다.

③해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중 “ 선원법 제107조에 의하여 설립된 선원교육기관 ” 을 “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으로 한다.

부칙 <제16391호,1999. 6.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62호,2001. 6.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54호,2004. 1. 29.>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선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중 “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를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로, “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장”을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⑦생략

부칙 <제18543호,2004. 9.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77호,2005. 9. 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 제11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과 제13조 내지 제15조, 제50조 및 제54조의 개정규정중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 내지 제18조의6의 개정규정중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의 선박소유자의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에의 가입, 지급사유의 확인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체불임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파산선고등에 관한 적용특례) 제18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전일까지는 다음 각 호로 본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2.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3.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개시의 결정

부칙 <제20037호,2007. 4.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2호,2007. 6. 29.>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로 한다.

⑪부터 18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0300호, 2007. 9. 28.>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 을 “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 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 「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 를 “ 「선박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시설 중 ” 으로 한다.

⑧ 부터 ⑮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0351호, 2007. 10. 31.> (수산업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 를 “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 「수산업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 을 “ 「수산업법」 제49조에 따라 ” 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 을 “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 을 “ 「수산업법」 제43조제2항제1호에 따른 ” 으로 한다.

⑩ 부터 22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0722호, 2008. 2. 29.>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5> 까지 생략

<66>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의 관할구역에서는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을 “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해양수산사무소의 관할구역에서는 지방해양항만청해양수산사무소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의 경우에는 선원신분증명서 발급장비를 갖춘 사무소의 장에 한한다) ” 을 “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 해양수산사무소장의 경우에는 선원신분증명서 발급장비를 갖춘 사무소의 장에 한한다) ” 으로 한다.

제3조제4호, 제10조제1항제1호 단서·제2호, 제12조, 제13조제4항, 제18조의2제3항, 제18조의4제3항, 제23조, 제43조제2항, 제52조제3항·제5항 및 별표 2 제10호 중 “ 해양수산부령 ” 을 각각 “ 국토해양부령 ” 으로 한다.

제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 본문, 제15조제3항, 제18조의3제2항·제3항, 제23조, 제38조제2항·제3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3조제4항, 제50조의2제1항·제2항, 제51조 및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제4항·제5항 중 “ 해양수산부장관 ” 을 각각 “ 국토해양부장관 ” 으로 한다

제18조제2호,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1조의2제1항제2호, 제37조, 제50조,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3조제2항 전단·제3항, 제54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중 “ 지방해양수산청장 ” 을 각각 “ 지방해양항만청장 ” 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 지방해양수산관청 ” 을 “ 지방해양항만관청 ” 으로 한다.

별표 2 중 “ 해양수산관청 ” 및 “ 지방해양수산관청 ” 을 각각 “ 국토해양관청 ” 및 “ 지방해양항만관청 ” 으로 한다.

<67>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0875호, 2008. 6. 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을 ” 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를 ” 로 한다.

⑧ 부터 ⑪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1530호, 2009. 6. 9.>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27호, 2010. 4. 20.> (수산업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2호 ” 를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 ” 으로 한다.

제5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호 중 “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1호 ” 를 “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 「수산업법」 제43조제2항제1호 ” 를 “ 「수산업법」 제41조제2항 ” 으로 한다.

⑪ 부터 2#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2157호, 2010. 5.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37호, 2011. 1. 24.>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1항제1호 중 “ 「보험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 ” 을 “ 「보험업법」 제2조제6호 ” 로, “ 동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 을 “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 으로, “ 「보험업법」 제2조제3호 ” 를 “ 「보험업법」 제2조제4호 ” 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22829호, 2011. 4. 4.>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3620호, 2012. 2.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제2항, 제3조의3제1항제1호, 제32조제1항, 제49조, 제52조제1항제3호, 별표 2 제2호타목·저목 및 처목의 개정규정은 「2006 해사노동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해당 종전의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규정은 법률 제11024호 선원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적용되는 종전의 「선원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송환보험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출항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일 전 임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출항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어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이 적용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선원의 교육훈련 위탁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2조제3항에 따라 선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법 제117조제1항 및 이 영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센터에 대하여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선원법」 제2조”를 “「선원법」 제3조”로 한다.

②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4제4항 전단 중 “해양수산물관청”을 “해양항만관청”으로, “승무원 명부”를 “선원명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선원법」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를 “「선원법」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선원법」 제85조제1항 또는 제88조”를 “「선원법」 제94조제1항 또는 제97조”로 한다.

제40조의6제1항제5호 중 “「선원법」 제85조제1항 또는 제88조”를 “「선원법」 제94조제1항 또는 제97조”로 한다.

③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선원법」 제3조제8호”를 “「선원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해양수산물관청”을 각각 “해양항만관청”으로, “「선원법」 제109조제1항”을 “「선원법」 제119조제1항”으로 한다.

④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5호의 민원사항란 중 “「선원법」 제63조제3항”을 “「선원법」 제64조제3항”으로 한다.

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5호의4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란 중 “「선원법」 제3조제5호”를 “「선원법」 제2조제6호”로 한다.

부칙 <제24443호, 2013. 3. 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3>까지 생략

<124>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제10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12조, 제13조제4항, 제18조의2제3항, 제18조의4제3항, 제23조, 제43조제2항 및 별표 2 제2호바목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2항제5호, 제8조제1항 본문, 제15조제3항, 제17조의2제2호, 제18조의3제2항·제3항, 제23조, 제32조제1항제5호, 제38조제2항·제3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3조제4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50조의2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5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50조의6제1항·제2항, 제51조,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25>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5310호, 2014. 4.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 제3조, 제3조의6, 제32조제1항제1호, 제49조의2, 제49조의4, 제49조의5 및 제49조의6: 「2006 해사노동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
2. 제5조제1항: 이 영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3. 제22조, 제22조의2 및 제52조제2항제1호: 2015년 2월 6일

제2조(선박조리사 자격 검정을 위한 준비행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22조 및 제5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박조리사교육 및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을 미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박조리사교육 및 선박조리사 자격시험 실시 전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실시한 선박조리사교육을 이수하고 선박조리사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박조리사교육을 이수하고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본다.

제3조(송환보험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후 출항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족의 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유족보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는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외국에서의 해양항만관청 업무 수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0조에 따라 대한민국 영사가 한 행위 또는 대한민국 영사에 대하여 한 행위는 제4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영사가 한 행위 또는 대한민국 영사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25532호, 2014. 8.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51호, 2014. 11. 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3>까지 생략

<384>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해양경찰관서”를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38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840호, 2014. 12. 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386호, 2015. 7.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비원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출항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제복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출항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795호, 2017. 1. 17.>

이 영은 2017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60호, 2017. 3. 27.>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6>까지 생략

<317>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를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31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557호,2017. 12.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79호,2018. 3.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14호,2018. 5. 28.>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63호,2018. 9. 18.>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 별표 1 제28호의3의 규정 ” 을 “ 별표 1의3 ” 으로 한다.

⑪부터1&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0116호,2019. 10.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90호,2021. 1. 12.>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25호,2023. 1. 10.> (수산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을 “ 「수산업법」 제40조제1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 「수산업법」 제41조제2항 ”을 “ 「수산업법」 제40조제2항 ”으로 한다.

2@ 부터4*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33814호,2023. 10. 17.>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주 기관 추진력 ”을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주기관 추진력 ”으로 한다.

부칙 <제34151호,2024. 1. 16.>

이 영은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52호,2024. 1. 16.>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 「해사안전법」 제2조제4호 ”를 “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2호 ”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4754호,2024. 7. 23.>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82호,2025. 3. 12.>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73호, 2026. 3. 10.>

이 영은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선원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4. 7. 23.>

선원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시 고려사항(제31조의2제1항 관련)

| 대상자 | 판단 시 고려사항 |
|------------------------------|--|
| 부모 등 해당 선원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원이 미성년이었던 기간(생후부터 19세가 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동안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였거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랐던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2. 선원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양육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을 한 기간 및 정도 3. 선원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선원에 대해 범죄행위,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으로서의 보호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및 위반 정도 |

■ 선원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7. 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17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선원의 근로 및 생활 등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단위: 만원)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12조 본문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9조
제3항제1호 | 100 | 150 | 200 |
| 나. 법 제14조 본문에 따른 통보를
법제처 | 법 제179조 | 100 | 150 | 200 |

| | | | | |
|---|----------------|-----|-------|-------|
| 하지 않은 경우 | 제3항제1호 | | | |
| 다. 선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9조 제2항제1호 | 250 | 375 | 500 |
| 라. 선장이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여객에게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키지 않은 경우 | 법 제179조 제2항제2호 | 250 | 375 | 500 |
| 마. 선장이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할 때 해원의 휴식시간에 지장을 준 경우 | 법 제179조 제2항제3호 | 250 | 375 | 500 |
| 바. 법 제18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9조 제3항제1호 | 60 | 120 | 200 |
| 사.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179조 제3항제3호 | 60 | 120 | 200 |
| 아. 법 제2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9조 제3항제4호 | 100 | 150 | 200 |
| 자.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9조 제3항제5호 | 60 | 120 | 200 |
| 차.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소유자의 친족인 근로자(선박소유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선박소유자의 배우자, 선박소유자의 4촌 이내의 혈족, 선박소유자의 4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가 법 제25조의3을 위반하여 선내 괴롭힘을 한 경우 | 법 제179조 제1항 | | | |
| 1) 선박소유자가 한 사람에게 수 차례 선내 괴롭힘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선내 괴롭힘을 한 경우 | | 500 | 1,000 | 1,000 |
| 2) 선박소유자가 그 밖의 선내 괴롭힘을 한 경우 | | 300 | 1,000 | 1,000 |
| 3) 선박소유자의 친족인 근로자 | | 300 | 500 | 1,000 |

| | | | | |
|--|------------------|--|--|--|
| 가 선내 괴롭힘을 한 경우 | | | | |
| 카. 선박소유자가 법 제25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선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9조 제2항제3호의2 | 300 | 500 | 500 |
| 타. 선박소유자가 법 제25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9조 제2항제3호의2 | 200 | 300 | 500 |
| 파. 선박소유자가 법 제25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9조 제2항제3호의2 | 200 | 300 | 500 |
| 하. 법 제25조의4제7항을 위반하여 선내 괴롭힘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 법 제179조 제2항제3호의2 | 300 | 500 | 500 |
| 거.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이 법 제4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179조 제3항제5호의2 | 100만원
한도에서
통지하지
않은 선박
1척당
1만원 | 150만원
한도에서
통지하지
않은 선박
1척당
2만원 | 200만원
한도에서
통지하지
않은 선박
1척당
4만원 |
| 너.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원의 승선·하선 교대가 있을 때 마다 선원명부에 그 사실과 승선 선원의 성명을 적지 않은 경우 | 법 제179조 제3항제6호 | 60 | 120 | 200 |
| 더. 법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원명부의 공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79조 제3항제6호 | 60 | 120 | 200 |
| 러. 선원 또는 선원관리사업자가 법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해외취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9조 제3항제6호의2 | 60 | 120 | 200 |
| 머. 선박소유자가 법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선원의 여권 등 신분증을 대리하여 보관한 경우 | 법 제179조 제3항제6호의3 | 200 | 200 | 200 |
| 버.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서류 제출 또는 제2항의 출입 | 법 제179조 제3항제6호 | 100 | 150 | 200 |

| | | | | |
|---|-------------------|-------|-------|-------|
|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의4 | | | |
| 서. 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179조 제3항제6호 의5 | 100 | 150 | 200 |
| 어. 선박소유자가 법 제58조를 위반하여 임금대장을 갖추어 두지 않거나 임금 지급 시마다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9조 제4항제1호 | 30 | 60 | 100 |
| 저. 선박소유자가 법 제62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휴식시간 및 시간외근로 관련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선장에게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9조 제3항제7호 | 60 | 120 | 200 |
| 처. 선박소유자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9조 제2항제4호 | 250 | 375 | 500 |
| 커. 선장이 법 제77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차별 급식을 한 경우 | 법 제179조 제3항제9호 | 60 | 120 | 200 |
| 터. 선박소유자가 법 제82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원의 직무상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에 해양항만관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9조 제3항제10호 | 100 | 150 | 200 |
| 퍼. 선박소유자가 법 제82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79조 제3항제11호 | 100 | 150 | 200 |
| 허. 선박소유자가 법 제82조제7항을 위반하여 선원에게 제복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9조 제2항제5호 | 250 | 375 | 500 |
| 고. 선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복을 입지 않은 경우 | 법 제179조 제4항제2호 | 30 | 60 | 100 |
| 노. 선박소유자가 법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서를 갖지 않은 사람을 선원으로 승무시킨 경우 | 법 제179조 제3항제12호 | 100 | 150 | 200 |
| 도. 재해보험사업자등이 법 제10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 법 제179조 제3항제12 | 1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호의2 | 통지하지 않은 선박
1척당
1만원 | 통지하지 않은 선박
1척당
2만원 | 통지하지 않은 선박
1척당
4만원 |
|--|-------------------|--------------------------|--------------------------|--------------------------|
| 로. 법 제10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직등록을 하지 않고 선박에 승무한 경우 | 법 제179조 제3항제2호 | 60 | 120 | 200 |
| 모. 법 제109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인등록을 하지 않고 선원을 고용한 경우 | 법 제179조 제3항제2호 | 100 | 150 | 200 |
| 보. 법 제1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원관리사업의 위탁사실과 내용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9조 제3항제13호 | 100 | 150 | 200 |
| 소. 법 제112조제10항에 따른 출석 및 서류제출의 요구, 실태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179조 제3항제13호의2 | 100 | 150 | 200 |
| 오. 법 제1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9조 제3항제14호 | 100 | 150 | 200 |
| 조. 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선박 또는 사업장 출입을 거부·기피·방해한 경우, 장부나 서류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장부 또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또는 거짓 진술을 한 경우 | 법 제179조 제3항제15호 | 100 | 150 | 200 |
| 초. 선원이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179조 제2항제6호 | 250 | 375 | 500 |
| 코. 선박소유자가 법 제12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게시하지 않거나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게시한 경우 | 법 제179조 제3항제16호 | 100 | 150 | 200 |
| 토. 법 제151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선박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 법 제179조 제3항제2호 | 100 | 150 | 200 |

| | | | | |
|-------------------|--|--|--|--|
| 선박 내에 갖춰 두지 않은 경우 | | | | |
|-------------------|--|--|--|--|



선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13.] [해양수산부령 제807호, 2026. 7. 13.,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051 - 773 - 57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17.>

제1조의2(유능부원 자격요건 등) ①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2에 따라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유능부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

1. 갑판부의 유능부원(이하 “갑판유능부원”이라 한다)이 되려는 경우: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가. 제41조제1항에 따른 갑판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서 18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을 것
 - 나. 제41조제1항에 따른 갑판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서 12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을 가지고 별표 5의5의 유능부원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2. 기관부의 유능부원(이하 “기관유능부원”이라 한다)이 되려는 경우: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가.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서 12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을 것
 - 나.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서 6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을 가지고 별표 5의5의 유능부원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선박 중 「선박직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화선박(이하 “자동화선박”이라 한다)에서 갑판부 및 기관부의 유능부원을 겸하는 유능부원(이하 “운항유능부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

1. 제41조제2항에 따른 운항당직부원으로서 18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을 것
2. 제41조제2항에 따른 운항당직부원으로서 12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을 가지고 별표 5의5의 유능부원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③ 「선원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의6에 따른 지방해양항만관청(이하 “지방해양항만관청”이라 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유능부원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그의 선원수첩에 해당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고, 유능부원 자격증을 발급[「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하

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7. 19.]

[중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17. 7. 19.>]

제1조의3(항해선의 항해수역) 법 제2조제8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해 내의 수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2017. 7. 19.>

[본조신설 2012. 5. 18.]

[제1조의2에서 이동 <2017. 7. 19.>]

제2조(적용제외 어선)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평수구역(이하 “평수구역”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 본문에 따른 연해구역(이하 “연해구역”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른 근해구역(이하 “근해구역”이라 한다)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총톤수 20톤미만의 어선(운반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1988. 11. 8., 1997. 12. 15., 1998. 9. 5., 1999. 3. 24., 2005. 10. 17., 2007. 11. 23., 2008. 3. 14., 2012. 5. 18., 2013. 3. 24., 2015. 7. 7.>

제3조(실습선원의 적용범위)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선원이 될 목적으로 실습을 위하여 승선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1. 2. 22., 1993. 7. 31., 1999. 3. 24., 1999. 6. 24., 2005. 10. 17., 2008. 8. 28., 2012. 5. 18., 2017. 1. 18., 2024. 3. 8.>

1. 법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른 해원의 징계 및 징의행위의 제한에 관한 규정

1의2. 법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강제 근로의 금지, 선내 괴롭힘의 금지 및 선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규정

2. 법 제38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4까지 및 제44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송환, 유기구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선원명부, 선원수첩, 선원신분증명서 및 승무경력증명서에 관한 규정

3. 법 제76조(제2항을 제외한다)·제77조 및 제87조에 따른 선내급식·선내급식비 및 건강진단서에 관한 규정

4. 법 제9장(법 제90조부터 제93조까지)에 따른 소년선원과 여자선원에 관한 규정

5. 법 제10장(법 제94조부터 제106조까지 및 제106조의2)에 따른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6. 법 제116조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②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습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은 그 실습선원이 실습을 마치고 승무하게 될 직급에 해당되는 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100분의 70으로 한다.<신설 1991. 2. 22.>

제3조의2(선원의 날) ① 법 제4조의2에 따른 선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선원의 날 기념행사
2. 선원의 위상 및 권익 향상 등을 위한 연구 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3. 선원의 위상 및 권익 향상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격려 및 포상
4. 선원에 대한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행사
5. 그 밖에 선원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선원의 날 기념행사는 매년 6월 셋째주 금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일에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념행사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9. 27.]

제2장 선장의 직무와 권한

제4조(출항 전의 검사 또는 점검) ① 선장은 검사 또는 점검사항을 목록으로 작성하여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항로 및 항해계획의 적정성
2. 선박의 항해와 관련한 기상 및 해상 정보
3. 법 제15조에 따른 비상배치표 및 비상시에 조치하여야 할 해원의 임무 숙지상태
4. 그 밖에 선장이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 7. 7.]

제4조의2(선장의 직접 지휘)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21. 6. 30.>

1. 안개, 강설(降雪) 또는 폭풍우 등으로 시계(視界)가 현저히 제한되어 선박의 충돌 또는 좌초의 우려가 있는 때
2. 조류(潮流), 해류 또는 강한 바람 등의 영향으로 선박의 침로(針路: 선수 방향) 유지가 어려운 때
3. 선박이 항해 중 어선군(漁船群)을 만나거나 운항 중인 항로의 통행량이 크게 증가하는 때
4. 선박의 안전항해에 필요한 설비 등의 고장으로 정상적인 선박 운항이 곤란하게 된 때

[본조신설 2015. 7. 7.]

제5조(조난 선박 등에 대한 구조의무의 한계) ① 법 제13조 단서에서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7. 12. 15., 2008. 3. 14., 2012. 5. 18., 2013. 3. 24.>

1. 조난장소에 도착한 다른 선박으로부터 구조의 필요가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2. 조난장소에 접근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구조할 수 없거나 구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조난장소까지 갈 수 없거나 기타 구조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선장이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②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난선박 또는 조난항공기에 가까이 있는 선박에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하되, 다른 선박에 의한 조난 구조가 행하여지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 12. 15., 2012. 5. 18., 2014. 11. 19., 2017. 7. 28.>

[제목개정 2012. 5. 18.]

제6조(기상 이상 등의 통보) ①법 제14조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무선전신 또는 무선전화의 설비를 갖춘 선박을 말한다. <개정 1997. 12. 15., 2008. 3. 14., 2012. 5. 18., 2013. 3. 24.>

②법 제14조 본문에 따라 선장이 가까이 있는 선박 및 해양경찰관서의 장에 통보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1997. 12. 15., 2012. 5. 18., 2014. 11. 19., 2017. 7. 28.>

[제목개정 2012. 5. 18.]

제7조(선내비상훈련) ① 삭제 <2015. 7. 7.>

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구명정훈련 등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은 매월 1회 선장이 지정하는 일시에 실시하되, 여객선의 경우에는 10일(국내항과 외국항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7일)마다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1. 7. 26., 2012. 5. 18.>

③ 삭제<2015. 7. 7.>

④선장은 당해선박의 해원 4분의 1 이상이 교체된 때에는 출항후 24시간 이내에 선내비상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선장은 구명정훈련시에 구명정을 순차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2월에 한번씩 구명정을 바다에 띄워 놓고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비상신호의 방법은 기적 또는 사이렌에 의한 연속 7회의 단음과 계속 1회의 장음으로 한다.<개정 2015. 7. 7.>

⑦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여객선의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방송 또는 동영상 방영 등의 방법으로 선박의 출항 후 1시간(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의 경우에는 4시간) 이내에 여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15. 7. 7.>

1. 승·하선 질서의 유지 등 여객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여객선의 구명설비, 소화기 등의 사용법
3. 비상시 여객 행동요령
4. 항해시간, 기상정보 및 입출항 예정시간

5. 그 밖에 여객이 비상시에 대비하여 알아야 할 사항

제8조(선내비상훈련사항의 기록) 선장은 선내 비상훈련시마다 훈련내용을 항해일지에 기록하고, 훈련 실시 상황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제9조(선내순시 및 점검) ①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하는자는 1일 1회 선내를 순시하여 구명기구, 대피통로 그밖에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사·정비하고 그 사실을 항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목적지를 1일 2회 이상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운항시마다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8.>

② 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8.>

1. 선내 식량과 식수의 보유량
2. 식량과 식수의 선내 저장 및 취급에 사용하는 장소와 설비의 위생 및 작동 상태
3. 선내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제공하는 취사실과 그 밖의 취사 설비의 위생 및 작동 상태
4. 선원 거주설비의 위생 및 수리 상태

[제목개정 2014. 1. 8.]

제10조(항해의 안전 확보) 법 제16조에 따른 항해당직의 실시, 선박의 화재예방 그밖에 항해안전을 위하여 선장이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 12. 15., 1999. 6. 24., 2005. 10. 17., 2012. 5. 18.>

1. 「국제 해상충돌 방지규칙」의 준수
2.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의 준수
3. 모든 항해장치의 정기적 점검과 그 기록의 유지
4. 선원 거주설비의 정기적 점검과 그 기록의 유지

[전문개정 1991. 2. 22.]

[제목개정 2012. 5. 18.]

제11조(시신에 대한 조치) 법 제17조제2항에서 “선박에 있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사망하여 선내 감염이 우려되거나, 기항 예정 항만에서 시신 인도가 지속적으로 거부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하며, 사유별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선박에 있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사망하여 선내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시신 인도방법을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조치
2. 기항 예정 항만에서 시신 인도가 지속적으로 거부되는 경우: 국내항으로의 시신 인도방법을 유가족과 협의하여 조치
3. 법 제13조에 따라 구조된 사람이 선박에서 사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조치
가. 사망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시신 인도방법을 관할 해양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조치

나. 사망한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시신 인도방법을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치
[전문개정 2022. 12. 2.]

- 제12조(유류품의 처리)** ①법 제18조에 따라 선장은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선박에 승선중인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의 친족 또는 친지를 참여시켜 그 유류품을 조사하여 유류품 목록을 작성하되, 친족 또는 친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선박에 승선한 다른 2명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2. 5. 18.>
- ②제1항의 유류품 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선장과 참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7. 12. 15., 2012. 5. 18.>
1.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의 성명·주소
 2. 사망 또는 행방불명이 된 일시 및 위치
 3. 유류품의 품명과 수량
 4. 유류품의 조사 및 목록을 작성한 일자
 5. 기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분내용
- ③선장은 제1항에 따른 유류품 및 그 목록을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 인도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 12. 15., 2012. 5. 18.>

- 제13조(서류의 비치)** ① 삭제 <1999. 6. 24.>
- ②법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개정 1988. 11. 8., 1997. 12. 15., 2001. 7. 26., 2007. 4. 13., 2008. 3. 14., 2012. 5. 18., 2013. 3. 24., 2014. 1. 8.>
1. 선박검사증서
 2. 항행하는 해역의 해도
 3. 기관일지
 4. 속구목록
 5. 선박의 승무정원증서
 6. 삭제<2017. 1. 18.>
 7. 「2006 해사노동협약」 내용이 포함된 도서(항해선이 아닌 선박과 어선은 제외한다)

- 제14조(비치서류의 서식)** 법 제20조에 따른 선원명부 및 항해일지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3. 24., 2001. 7. 26., 2012. 5. 18.>
1. 선원명부 : 별지 제1호서식. 다만, 선원명부의 공인면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다.
 2. 항해일지 : 별지 제2호서식
 3. 삭제<1999. 3. 24.>
 4. 속구목록 : 별지 제4호서식

제15조(선박운항에 관한 보고 및 조사)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되, 긴급한 때에는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1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장을 포함한 3인이상의 관련자가 서명날인한 사건의 경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 2. 22.>

②선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선장 또는 그 대리인이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21조에 따른 보고를 하는 때에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 항해일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 기타의 사유로 항해일지가 멸실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12. 15., 1999. 8. 24., 2008. 3. 14., 2017. 1. 18., 2017. 7. 19.>

[제목개정 1991. 2. 22.]

제3장 선내질서의 유지

제16조(징계위원회) ①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징계위원회는 기관장·운항장·1등항해사·1등기관사·1등운항사·통신장·징계대상자의 소속 부원중 최상위 직책을 가진 사람의 순위로 구성하되, 이들에 의한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 3. 24., 2012. 5. 18.>

②징계위원회는 선장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된다.

③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해원을 출석시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해원을 출석시켜 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④징계위원회가 해원에 대한 징계사항을 심사한 때에는 징계위원회 위원이 날인한 징계심사서류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삭제 <1988. 11. 8.>

제17조(정의행위의 제한) 법 제25조제3호에서 “위험물의 종류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조에 규정된 위험물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적재하고 항행중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을 적재하지 아니하고 항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8. 3. 14., 2012. 5. 18., 2013. 3. 24.>

1. 고압가스
2. 인화성액체류
3. 방사성물질
4. 화약류
5. 산화성물질류
6. 부식성물질
7. 유해성물질

[본조신설 2005. 10. 17.]

제4장 선원근로계약

제18조 삭제 <2019. 4. 15.>

제19조(송환비용의 범위) 법 제38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1. 선원이 보유한 30킬로그램 이하의 화물에 대한 운송비용
2. 선원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의료관리에 필요한 비용

[본조신설 2012. 5. 18.]

제19조의2(유기사실인정) ① 영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유기사실인정(이하 “유기사실인정”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선원 또는 법 제42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대리인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유기사실인정 신청서에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적거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유기된 선원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중 1명의 선원이 제1항에 따른 유기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른 유기된 선원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유기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유기사실인정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유기사실인정(불인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 18.]

제19조의3(유기구제보험 등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법 제4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1의 2와 같다.

[본조신설 2017. 1. 18.]

제20조(선원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4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1. 선원의 국적, 성명, 생년월일 및 출생지
2. 선박소유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주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선원근로계약이 체결된 장소 및 날짜
4. 선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

5. 임금에 관한 사항
 6. 유급휴가 일수에 관한 사항
 7. 선원근로계약의 종료에 관한 사항
 8. 선박소유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건강보호 및 사회보장 등에 관한 사항
 9. 선원의 송환비용에 관한 사항
 10. 선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11. 단체협약에 관한 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 [전문개정 2012. 5. 18.]
- [시행일] 「2006 해사노동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

제20조의2(일괄공인) ①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해양항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원의 승무자격이 같은 다수의 선박간에 선원이 교대승무할 수 있도록 교대승무하는 선박과 선원명부를 일괄하여 공인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08. 12. 19., 2012. 5. 18., 2016. 6. 30.>

1. 선박소유자가 같은 선박(어선은 제외한다) 다수가 같은 항로 또는 인접항로에서 운항하는 경우
 2. 운항중인 여객선이 수리 등으로 운항이 불가능한 때를 대비하여 이를 대체하여 운항할 예비 여객선을 운영하는 경우(예비여객선의 승무정원이 운항중인 여객선의 승무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동일한 선박소유자에 속하는 다수의 어선이 인접한 장소에서 공동으로 조업하는 경우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공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8. 3. 14., 2022. 12. 2.>
- [본조신설 2001. 7. 26.]

제20조의3(예비공인) ①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선박이 운항중에 승무한 선원이 사망하거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인수하여 수행할 선원을 미리 공인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 ②제1항의 경우 그 직무를 인수하여 수행할 선원은 수행할 직무에 맞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8. 3. 14., 2022. 12. 2.>
- [본조신설 2001. 7. 26.]

제21조(선원명부 등의 공인신청) ①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법 제44조제3항 및 제45조제3항에 따라 선원명부 및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에 대한 승선·하선 또는 승선취소의 공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신청서를, 직무변경 및 계약갱신 등에 따른 승선·하선에 관한 변경사항의 공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승선·하선변경공인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팩스 또는 인터넷 등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1997. 12. 15., 1999. 3. 24., 1999. 6. 24., 2000. 3. 8., 2001. 7. 26., 2005. 10. 17., 2008. 3. 14., 2008. 12. 19., 2012. 5. 18., 2019. 4. 15., 2021. 2. 19.>

②법 제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서는 별지 제8호의5서식에 의한다.<신설 1999. 6. 24., 2001. 7. 26.>

[제목개정 2012. 5. 18.]

제22조(선원명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의 공인신청) 선원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라 하선 공인을 신청하는 자가 선원명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선원명부 멸실·훼손에 따른 공인(공인확인)신청서에 그 사유서와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5. 18.]

제22조의2(해외취업 신고) 법 제44조의2에 따라 외국 국적 선박소유자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원은 선원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2서식의 해외취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7. 14.>

1.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 1부
2. 선원근로계약서 등 해외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조신설 2022. 12. 2.]

제23조(선원수첩 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의 공인신청) ①법 제4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공인을 신청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선원수첩(신원보증서) 제출 불능사유서를 공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8.>

②제1항에 따라 공인을 받은 선원은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인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7. 12. 15., 2008. 3. 14., 2012. 5. 18.>

[제목개정 2012. 5. 18.]

제24조(선원의 하선 공인) ① 법 제45조제3항 단서에서 “행방불명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 3. 24.>

1.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고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명부의 공인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2.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1개월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
3.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사망한 경우(선박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파산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하선 공인을 받으려는 선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신청서에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

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선 공인을 받으려는 선원이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공인신청과 공인의 사후 확인을 위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 5. 18.]

제25조 삭제 <1997. 12. 15.>

제26조(공인신청에 대한 확인) ① 지방해양항만관청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으로부터 승선공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후 공인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근로계약이 없는 선장의 승선공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호 및 제6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공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24., 1999. 6. 24., 2005. 10. 17., 2007. 8. 17., 2008. 3. 14., 2011. 4. 11., 2012. 5. 18., 2017. 1. 18.>

1. 선원근로계약이 항해의 안전 또는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한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선박소유자가 선원법령에서 정한 재해보상 및 유기구제를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3. 선원근로계약 당사자의 합의 여부
- 3의2. 법 제56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 보험·공제 또는 기금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4.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서(외국인 선원의 경우에는 자국에서 받은 건강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다)
5. 법 제109조에 따른 구직등록 및 구인등록의 여부(외국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6.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선원수첩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입국사증 발급 여부(국내에서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의 경우에 한한다)

② 제21조제1항에 따라 승선공인신청을 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받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공인한 선원명부·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 사본을 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송부하고, 사본을 받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사후에 지방해양항만관청으로부터 선원명부·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 원본에 공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08. 12. 19., 2012. 5. 18.>

③ 삭제 <2015. 7. 7.>

제27조(승선공인사항 확인신청) ①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선박에 비치한 선원명부를 잃어버리거나 선원명부가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선원명부를 새로 작성하여 선원의 현재의 승선현황에 관한 확인을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5., 2008. 3. 14., 2012. 5. 1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선원명부 멸실·훼손에 따른 공인(공인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8.>

1. 새로 작성한 선원명부
2. 현재 승선사항이 기록된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
3. 사유서

제28조(선원수첩 재발급시의 확인) 선원이 선원수첩의 재발급을 받은 때에는 현재의 승선 공인 사항에 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7. 12. 15., 2008. 3. 14., 2012. 5. 18.>

[제목개정 2012. 5. 18.]

제29조 삭제 <2005. 10. 17.>

제30조(귀국후 선원수첩의 공인) 선원이 외국에서 하선공인을 받지 아니하고 귀국한 때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관리사업자는 25일 이내에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고 선원수첩의 공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7. 12. 15., 2008. 3. 14., 2020. 4. 6.>

제31조(선원수첩멸실시의 공인사항등 증명) ①선원수첩을 소지한 사람이 이를 잃어버리거나 선원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승하선공인의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0. 1. 3., 1991. 2. 22., 1997. 12. 15., 1999. 3. 24., 2008. 3. 14., 2012. 5. 18.>

②제1항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 1. 3., 1991. 2. 22., 1997. 12. 15., 1999. 3. 24., 2008. 3. 14., 2012. 5. 18.>

1. 증명을 신청하는 자의 성명·생년월일 및 주소
2. 선원수첩을 발급한 지방해양항만관청과 수첩번호
3. 증명을 받고자 하는 사항
4. 증명을 받고자 하는 사유

제32조 삭제 <1999. 3. 24.>

제33조 삭제 <1999. 3. 24.>

제34조(선원수첩의 발급 신청) 영 제8조에 따라 선원수첩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 15호서식의 선원수첩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선원수첩의 발급을 신청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18세 이상 30세 이하에 해당하는 남자에게만 적용하며, 외국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만 적용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 3., 1991. 2. 22., 1993. 7. 31., 1997. 12. 15., 1999. 3. 24., 2000. 3. 8., 2005. 10. 17., 2007. 8. 17., 2008. 3. 14., 2008. 12. 31., 2011. 4. 11., 2012. 5. 18., 2017. 1. 18., 2017. 7. 19.>

1. 삭제 <1999. 3. 24.>
 2. 삭제 <2007. 8. 17.>
 3. 삭제 <2000. 3. 8.>
 4.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것)
 5. 외국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가. 여권 사본 1통
 - 나. 본국정부에서 발행한 선원수첩 또는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확인받은 서류
 6. 삭제 <1999. 6. 24.>
- [제목개정 2012. 5. 18.]

제34조의2(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신청 등) 영 제13조에 따라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선원신분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18세 이상 30세 이하에 해당하는 남자에게만 적용하며, 외국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만 적용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17., 2008. 3. 14., 2011. 4. 11., 2012. 5. 18., 2017. 7. 19.>

1. 삭제 <2007. 8. 17.>
 2. 선원수첩
 3. 선원신분증명서(신규 발급신청의 경우를 제외한다)
- [본조신설 2005. 10. 17.]
- [제목개정 2012. 5. 18.]

제35조 삭제 <2021. 2. 19.>

제35조의2(선원수첩 발급의 특례) ①영 제10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1999. 6. 24., 1999. 9. 16., 2008. 3. 14., 2012. 5. 18., 2013. 3. 24.>

1. 삭제 <1999. 9. 16.>
 2. 구명정 조정사인 부원
 3. 의료관리자
 4.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외에 원양어선에 승무하는 부원
- ②영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선박의 운항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무원, 매점원 및 안내원등으로 승무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8. 3. 14., 2013. 3. 24.>

[본조신설 1999. 3. 24.]

[제목개정 2012. 5. 18.]

제36조 삭제 <1999. 6. 24.>

제37조(선원수첩 등의 발급) ① 선원수첩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되, 본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인을 통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8.>

② 선원신분증명서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르되, 본인에게 발급하거나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선장 또는 고용인에 한한다)을 통하여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05. 10. 17., 2012. 5. 18.>

③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대상자가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7. 12. 15., 1999. 6. 24., 2005. 10. 17., 2008. 3. 14., 2012. 5. 18.>

④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선원수첩에 승선선박 또는 승선구역을 한정하거나 유효기간을 정하여 발급하여야 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1997. 12. 15., 1999. 6. 24., 2008. 3. 14., 2012. 5. 18.>

1. 국외출입의 제한이 있는 사람
2. 어선 또는 외국영토에 기항하지 아니하는 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해양항만관청이 승선선박 또는 승선구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4항에 따라 승선 선박이나 승선구역을 제한하여 선원수첩을 발급하는 경우 선원수첩의 관청기재사항란에 그 제한내용을 기재하고 날인하되, 그 제한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선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제한을 해제한다. <개정 1997. 12. 15., 2008. 3. 14., 2012. 5. 18.>

[제목개정 2005. 10. 17., 2012. 5. 18.]

제38조(선원수첩 등의 정정 및 재발급) ① 선원은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에 기재사항의 착오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7호서식의 기재사항 정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기재사항의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1997. 12. 15., 2005. 10. 17., 2008. 3. 14., 2023. 7. 14.>

1.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
2. 기재사항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49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사진이나 주요 기재사항을 알아볼 수 없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란의 여백이 없게 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7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5. 10. 17., 2008. 3. 14., 2012. 5. 18., 2013. 3. 24., 2023. 7. 14.>

1.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5밀리미터, 세로 4센티미터 5밀리미터의 것으로서 선원수첩의 재발급만 해당한다)

2. 선원신분증명서(선원신분증명서의 재발급만 해당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정정 또는 재발급의 신청은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한 지방해양항만관청 또는 다른 지방해양항만관청에 할 수 있다.<개정 1993. 7. 31., 1997. 12. 15., 2005. 10. 17., 2008. 3. 14., 2012. 5. 18.>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3. 7. 14.>

1. 병적증명서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제목개정 2005. 10. 17., 2012. 5. 18.]

제38조의2(자문) 법 제59조, 법 제115조제2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 자문이란 「정책자문위원회규정」 제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설치되는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말한다. <개정 2001. 7. 26., 2005. 10. 17., 2008. 3. 14., 2012. 5. 18., 2013. 3. 24.>

[본조신설 1999. 6. 24.]

제4장의2 임금 <신설 2005. 10. 17.>

제38조의3(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5조의4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3명

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으로 재직했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험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2. 19.]

제39조(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①영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 사실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의5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의 선원근로감독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1. 퇴직 당시의 선박소유자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1부
2. 당해 선박소유자의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당해 선박소유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1부

②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선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중 1인의 퇴직선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다른 퇴직선원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 10. 17.]

제39조의2(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7호의6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본조신설 2005. 10. 17.]

제39조의3(체불임금 지급사유의 확인 신청) 영 제18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지급사유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의7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의 선원근로감독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1. 퇴직 당시의 선박소유자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또는 제39조의2의 규정에 따른 도산등사실 인정통지서 사본 1부
2. 당해 선박소유자가 체불임금 등을 증명한 서류 1부(소유자가 발급한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5. 10. 17.]

제39조의4(체불임금 지급사유 확인의 통지 등) 제39조의3의 규정에 따른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영 제18조의5제1항 각 호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의8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7호의9서식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본조신설 2005. 10. 17.]

제5장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

제39조의5(휴식시간의 완화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60조제4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휴식시간의 완화에 관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선원에게 임의의 1주간에 7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줄 것
2. 휴식시간의 완화는 계속하여 2주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휴식시간의 완화가 적용되는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계속하여 휴식시간의 완화를 적용할 수 있다.
3. 선원에게 임의의 24시간에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줄 것
4. 제3호에 따른 휴식시간을 주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 가. 휴식시간의 분할은 두 차례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나. 휴식시간을 두 차례로 분할하는 경우 휴식시간 중 1회는 연속하여 최소한 6시간 이상, 다른 휴식시간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연속되는 휴식시간 사이의 간격은 1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5.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휴식시간의 완화를 적용하는 기간은 임의의 1주간에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에 따른 휴식시간의 분할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승무한 선원에 대한 휴식시간의 완화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선원에게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 휴식시간을 줄 것
2. 제1항제2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식시간의 완화가 적용되는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하지 아니하여도 휴식시간의 완화를 적용할 수 있으나, 휴식시간의 완화의 적용기간은 계속하여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휴식시간을 최대 세 차례까지 분할할 수 있으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 가. 휴식시간을 세 차례로 분할 할 경우 휴식시간 중 1회는 연속하여 4시간 이상, 다른 휴식시간은 각각 1시간 이상일 것
 - 나. 연속되는 휴식시간의 간격은 1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 간격보다 더 짧은 간격으로 유급휴가를 주거나 법 제70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일수에 1일 이상을 더한 날 수 만큼의 유급휴가를 줄 것. 이 경우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휴식시간의 분할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항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로를 말한다.

1.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는 제외한다), 일본국 및 러시아 연방공화국(극동지역에 한정한다)의 항구 사이의 항로
2. 그 밖에 선박소유자단체 및 선원단체의 대표자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로

[본조신설 2014. 9. 19.]

제39조의6(소년선원의 근로시간 등) 법 제61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시간, 휴식시간 등에 관한 규정”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18세 미만인 소년선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18세 미만인 소년선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휴식시간을 줄 것
 - 가. 1일 1시간 이상의 식사를 위한 휴식시간
 - 나. 매 2시간 연속 근로 후 즉시 15분 이상의 휴식시간

[본조신설 2014. 9. 19.]

제40조(근로시간 등의 기록 서류)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선원의 1일 근로시간, 휴식시간 및 시간외근로를 기록할 서류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5. 18.]

[시행일] 「2006 해사노동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

제40조의2(선상훈련 및 평가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선상훈련 및 평가계획의 수립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항해당직 기준의 작성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12. 5. 18.]

제41조(항해당직 부원의 자격요건) ①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16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0. 1. 3., 1991. 2. 22., 1993. 7. 31., 1999. 6. 24., 2005. 10. 17., 2012. 5. 18., 2022. 12. 2.>

1. 총톤수 200톤이상의 선박에서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부원으로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을 것
 2.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부원으로서 2월 이상 승무한 경력을 가지고 별표 5의5의 당직부원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3.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이 있을 것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선박 중 자동화선박에서 갑판부 및 기관부의 항해당직을 겸하여 행하는 부원(이하 “운항당직부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사람은 16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1. 2. 22., 1993. 7. 31., 1997. 12. 15., 2005. 10. 17., 2008. 3. 14., 2012. 5. 18., 2013. 3. 24., 2017. 7. 19., 2022. 12. 2.>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동화 선박에서 1년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거나 별표 5의5의 운항당직부원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2.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이 있을 것. 다만, 운항과외의 학과를 이수한 자는 별표 5의5의 운항당직부원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3. 총톤수 200톤이상의 선박의 승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제1호 또는 제2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을 받았을 것
- ③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당직부원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그의 선원수첩에 해당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고, 당직부원 자격증을 발급(정보통신망을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19.>

[제목개정 2012. 5. 18.]

제42조(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원의 자격요건) ① 법 제64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선원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2014. 1. 8., 2016. 1. 13., 2022. 12. 2.>

1. 유조선 또는 케미칼탱커에 선장, 1등항해사, 기관장, 1등기관사, 운항장으로 승무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모든 기준을 충족할 것
 - 가. 별표 5의5에 따른 탱커기초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 나.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보수교육과정 중 유조선 또는 케미칼탱커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 다. 유조선 또는 케미칼탱커에서 3개월(3회 이상의 하역작업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을 것
 2. 유조선 또는 케미칼탱커에 항해사(1등항해사는 제외한다), 기관사(1등기관사는 제외한다), 운항사, 갑판부 및 기관부 부원 또는 운항당직 부원으로 승무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가. 별표 5의5에 따른 탱커기초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 나. 유조선 또는 케미칼탱커에서 3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라 한다)의 원장(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해기(海技)능력평가에 합격하였을 것
 3. 액화가스탱커에 선장, 1등항해사, 기관장, 1등기관사, 운항장으로 승무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모든 기준을 충족할 것
 - 가. 별표 5의5에 따른 탱커기초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 나.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보수교육과정 중 액화가스탱커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 다. 액화가스탱커에서 3개월(3회 이상의 하역작업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을 것
 4. 액화가스탱커에 항해사(1등항해사는 제외한다), 기관사(1등기관사는 제외한다), 운항사, 갑판부 및 기관부 부원 또는 운항당직 부원으로 승무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가. 별표 5의5에 따른 탱커기초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 나. 액화가스탱커에서 3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이 실시하는 해기능력평가에 합격하였을 것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위험화물적재선박 중 항해선이 아닌 선박에 승무하는 선장, 1등항해사, 기관장, 1등기관사, 운항장 또는 운항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8.>

1. 유조선 또는 케미칼탱커: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액화가스탱커: 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③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원으로부터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유조선, 케미칼탱커 또는 액화가스탱커의 승무자격증의 발급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그의 선원수첩에 해당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고, 해당 승무자격증을 발급(정보통신망을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4., 2014. 1. 8., 2017. 7. 19.>
- ④ 제3항에 따른 유조선, 케미칼탱커 또는 액화가스탱커의 승무자격의 유효기간은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선원당직국제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각각 5년으로 한다. 다만, 부원의 승무자격의 유효기간은 따로 없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4. 1. 8.>
- ⑤ 제4항에 따른 승무자격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승무자격의 효력을 계속 유지시키려는 사람 또는 제4항에 따른 승무자격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승무자격의 효력이 상실된 후 승무자격을 되살리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신설 2014. 1. 8., 2022. 12. 2.>
 1. 승무자격 유효기간 만료일 또는 승선일 전 5년 이내에 같은 종류의 위험화물적재선박에 3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을 것
 2. 승무자격 유효기간 만료일 또는 승선일 전에 별표 5의5에 따른 탱커기초 교육과정(제1항 각 호에 따라 승무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이수한 교육과정은 제외한다)을 이수했을 것
 [전문개정 2012. 5. 18.]

제42조의2(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원의 자격요건) ① 법 제64조제6항에 따른 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이하 “가스연료추진선박”이라 한다)에 승선하는 선원의 자격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2. 19.>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1. 2. 19., 2022. 12. 2.>
 1. 기초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가. 별표 5의5에 따른 가스연료추진선박 기초교육을 이수했을 것
 - 나. 제42조제3항에 따른 액화가스탱커 승무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상급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가. 제1호에 따른 기초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을 보유하고,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보수교육 중 가스연료추진선박 직무교육을 이수했으며, 「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안전에 대한 국제기준(IGF Code)」(이하 “가스연료추진

선박 국제기준 ”이라 한다) 적용 선박에서 3회 이상의 연료 수급작업 경력을 포함하여 1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을 것. 다만, 연료 수급작업 경력 횟수를 산정할 때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모의 연료 수급작업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회로 한정하여 연료 수급작업 경력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나. 제42조제3항에 따른 상급 액화가스탱커 승무자격증을 보유하고, 가스연료추진선박 국제기준 적용 선박에서 3회 이상의 연료 수급작업 경력 또는 액화가스탱커에서 3회 이상의 하역작업 경력이 있으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가스연료추진선박 또는 가스나 저인화점 연료를 화물로 운송하는 선박에 3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을 것

③ 제2항에 따른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의 유효기간은 선원당직국제협약에 따라 5년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승무자격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승무자격의 유효기간 만료 후 승무자격을 회복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연장 또는 회복되는 승무자격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다시 연장 또는 회복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2. 12. 2.>

1. 승무자격의 유효기간 만료일 또는 승무자격의 회복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가스연료추진선박에 3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을 것
2. 승무자격의 유효기간 만료일 또는 승무자격의 회복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별표 5의5에 따른 가스연료추진선박 기초교육을 이수했을 것

[본조신설 2019. 11. 1.]

제43조(구명정 조종사의 자격요건 등) ①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구명정 조종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선원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발급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5., 2005. 10. 17., 2008. 3. 14., 2012. 5. 18., 2017. 1. 18.>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선원에 대하여 그의 선원수첩에 구명정 조종사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 주고, 별지 제20호서식의 구명정 조종사 자격증을 발급(정보통신망을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구명정 조종사 자격의 유효기간은 선원당직국제협약에 따라 5년으로 한다.<개정 1999. 3. 24., 2001. 7. 26., 2005. 10. 17., 2008. 3. 14., 2012. 5. 18., 2016. 1. 13., 2017. 1. 18., 2022. 12. 2.>

1. 18세이상일 것
2. 12개월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거나 또는 6월 이상의 승무경력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별표 5의5의 상급안전교육 중 구명정 조종사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③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선박에는 그 적재하여야 할 구명정·구조정 또는 고속구조정 및 구명뗏목(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팽창식구명뗏목을 제외한다. 이하 “구명정등”이라 한다)마다 다음 각호의 인원수(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1인)의 구명정 조종사를 승선시켜야 한다. 다만, 최대탑재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탑재하고 항해를 할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해양항만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인원수를 감할 수 있다.<개정 1987. 12. 7., 1997. 12. 15., 1999. 3. 24., 2008. 3. 14., 2012. 5. 18.>

1. 정원 40인이하의 구명정 : 2인
2. 정원 41인이상 61인이하의 구명정 : 3인
3. 정원 62인이상 85인이하의 구명정 : 4인
4. 정원 86인 이상의 구명정 : 5인
5. 구조정 또는 고속구조정 : 2인
6. 구명뗏목 : 1인

④선장은 미리 구명정등에 그 구명정 조종사를 배치하고 각기 그 지휘자를 정하여 두어야 한다.<신설 1987. 12. 7., 2012. 5. 18.>

⑤구명정 조종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에 종사한다.<신설 1987. 12. 7., 1997. 12. 15., 2012. 5. 18.>

1. 식료、항해용구、기타、물품의 구명정등에의 적재, 구명정등의 하강과 해원 및 여객의 구명정등에의 승정지휘
2. 구명정등의 운항지휘 또는 보좌
3. 구명출발사기、구명부환、기타 구명설비의 조작
4. 구명정등과 기타의 구명설비(구명조끼를 제외한다)의 정비 및 관리

[제목개정 2012. 5. 18.]

제43조의2(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 ①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구명정 조종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별표 5의5에 따른 고속구조정 조종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의 선원수첩에 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 주고,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증을 발급(정보통신망을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7. 1. 18., 2022. 12. 2.>

② 제1항에 따른 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의 유효기간은 선원당직국제협약에 따라 5년으로 한다.<개정 2016. 1. 13.>

[전문개정 2012. 5. 18.]

제43조의3(여객안전관리선원의 자격 등) ① 법 제64조제5항에서 “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 ” 이란 별표 5의5에 따른 여객선 상급교육 과정을 이수한 선원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

② 영 제21조제4항에 따른 여객선에는 제1항에 따른 선원(이하 “ 여객안전관리선원 ” 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무시켜야 한다.

1. 여객 정원이 100명 이상 500명 이하인 경우: 1명 이상
2. 여객 정원이 500명 초과 1천명 이하인 경우: 2명 이상
3. 여객 정원이 1천명 초과 1천 500명 이하인 경우: 3명 이상
4. 여객 정원이 1천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4명 이상

③ 선장은 여객안전관리선원을 여객선의 객실 갑판에 배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시 여객에 대한 구명조끼 등 구명기구의 지급 및 착용 안내
2. 비상시 여객의 집합장소 안내
3. 여객의 구명정등 탑승 보조
4. 비상시 여객의 탈출로 정비 및 관리
5. 그 밖에 선장이 지시하는 비상시 여객지원 업무

[본조신설 2015. 7. 7.]

제44조(승무정원증서의 발급) ①선박소유자가 법 제65조에 따라 선박의 승무정원을 정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승무정원인정신청서에 법 제119조에 따른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 2. 22., 1997. 12. 15., 2008. 3. 14., 2012. 5. 18., 2017. 1. 18.>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취업규칙과 해당 선박의 승무정원을 심사하여 적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승무정원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1. 2. 22., 1997. 12. 15., 2008. 3. 14., 2012. 5. 18., 2017. 1. 1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정원인정신청 및 승무정원증서 발급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청 및 발급을 할 수 있다. <신설 2005. 10. 17., 2012. 5. 18.>

[제목개정 2012. 5. 18.]

제45조(선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한 특례) ①법 제66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지방해양항만관청의 인정을 받은 선박을 말한다. <개정 1997. 12. 15., 2001. 7. 26., 2008. 3. 14., 2012. 5. 18., 2013. 3. 24., 2017. 1. 18.>

1. 항해사가 기관실의 기관을 원격조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선박
2. 선박의 항해·정박등을 위한 자동설비를 갖춘 선박
3. 압항부선 : 기선과 결합되어 밀려서 추진되는 선박
4. 해저조망부선 : 잠수하여 해저를 조망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선박으로서 스스로 항행할 수 없는 선박

②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해당직부원의 자격요건 또는 법 제65조에 따른 승무정원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5., 2008. 3. 14., 2012. 5. 18., 2017. 1. 18.>

③제1항에 따른 지방해양항만관청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승무정원완화허가신청서에 지방해양항만관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선급협회가 발급한 해당 선박이 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0. 1. 3., 1991. 2. 22., 1997. 12. 15., 2001. 7. 26., 2005. 10. 17., 2007. 11. 23., 2008. 3. 14., 2013. 3. 24., 2017. 1. 18., 2019. 8. 20.>

[제목개정 2012. 5. 18.]

제45조의2(여객선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여객선 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기준(이하 “적성심사기준”이라 한다) 및 적성심사기준의 충족 여부 확인은 별표 5의2에 따른다.

②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여객선선장에 대한 적성심사(이하 “적성심사”라 한다) 결과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그 유효기간은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한 날부터 3년(여객선선장이 적성심사를 받을 당시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적성심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적성심사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다시 적성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객선선장이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면 원래의 적성심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심사의 유효기간을 기산한다.

④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한 여객선선장이 그 유효기간에 같은 항로를 항해하는 같은 형태의 다른 여객선에 승무하려는 경우에는 적성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⑤ 해양항만관청은 적성심사를 매년 6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명 이상으로 적성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성심사를 실시해야 한다.<개정 2016. 1. 13., 2023. 7. 14.>

1. 해운·선박안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2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 또는 운항사의 해기사 면허를 받고 5년 이상 승선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해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운업과 관련한 사업장에서 선원·선박안전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기관에서 3년 이상 선박의 운항 또는 선박용 기관의 운전과 관련한 과목을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 나. 한국해양수산연수원
5. 「해운법」 제22조에 따른 선박운항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15. 7. 7.]

제46조(근로시간 및 승무정원의 적용제외 선박) 법 제68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평수구역을 그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1997. 12. 15., 2008. 3. 14., 2012. 5. 18., 2013. 3. 24.>

[제목개정 2012. 5. 18.]

[시행일] 「2006 해사노동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

제5장의2 유급휴가 <신설 2012. 5. 18.>

제46조의2(유급휴가의 일수)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유급휴가의 일수는 1개월에 12분의 15일로 하되, 1일 미만의 단수는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2. 5. 18.>

[본조신설 2008. 8. 28.]

[중전 제46조의2는 제46조의3으로 이동 <2008. 8. 28.>]

제46조의3(유급휴가 사용일수의 계산) 법 제71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2. 5. 18., 2013. 3. 24.>

1. 선박소유자가 인정하는 포상 또는 보상 성격의 휴가기간
2. 기상악화·천재지변 또는 사변으로 인한 정박기간
3. 정박중 선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 상륙한 기간

[본조신설 1999. 3. 24.]

[제46조의2에서 이동, 종전의 제46조의3은 제46조의4로 이동 <2008. 8. 28.>]

제46조의4(어선원의 유급휴가 적용대상 어선) 법 제74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선을 말한다. <개정 2008. 2. 4., 2008. 3. 14., 2008. 3. 31., 2012. 5. 18., 2013. 3. 24., 2023. 2. 3.>

1.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2.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에 따른 대형저인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3.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에 따른 대형선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본조신설 2005. 10. 17.]

[제4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46조의4는 제46조의5으로 이동 <2008. 8. 28.>]

제46조의5(어선원의 유급휴가 일수) 법 제74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일수는 계속 승무한 1년에 대하여 20일로 하고,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승무한 때 1월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가산한다.

<개정 2012. 5. 18.>

[본조신설 2005. 10. 17.]

[제46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46조의5는 제46조의6으로 이동 <2008. 8. 28.>]

제46조의6(어선원의 유급휴가 부여방법) ①제46조의4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원이 1년간 계속하여 승무한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부터 3월 이내에 어선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어획작업 및 항행중인 때에는 해당 항해를 마칠 때까지 휴가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8. 8. 28.>

②유급휴가는 단체협약 또는 고용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기를 분할하여 이를 부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유급휴가의 구체적인 부여방법에 대하여는 선박소유자와 선원과의 협의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5. 10. 17.]

[제46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46조의6은 제46조의7로 이동 <2008. 8. 28.>]

제46조의7(유급휴가급) ① 제46조의4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는 유급휴가중인 어선원에게 통상임금을 유급휴가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28.>

② 제46조의4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원이 제46조의5에 따른 유급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임금 외에 유급휴가급을 따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28.>

[본조신설 2005. 10. 17.]

[제46조의6에서 이동 <2008. 8. 28.>]

제6장 선내 급식과 안전 및 보건 <개정 2012. 5. 18.>

제47조(선내급식) ① 선박소유자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적당한 양과 질의 선내급식을 위하여 선박마다 선장과 조리책임자를 포함하여 5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급식위원회를 두어 선원의 식생활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영토에 기항하지 아니하는 선박 또는 새우트를 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5. 18.>

② 삭제 <2012. 5. 18.>

제47조의2(선박조리사교육) 영 제22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조리사교육”이란 별표 5의5에 따른 선박조리사교육 말한다. <개정 2022. 12. 2.>

[본조신설 2014. 9. 19.]

제47조의3(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의 응시)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이하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응시원서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3.>

[본조신설 2014. 9. 19.]

제47조의4(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 9. 19.]

제47조의5(선박조리사 자격증의 발급)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선박조리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선박조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선박조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박조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을 받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선박조리사 자격증을 발급(정보통신망을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9. 19.]

제47조의6(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79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1. 18.>

1. 선내 시설 및 장비의 주기적인 점검·관리
2. 소년선원과 여성선원의 보호
3. 위험작업 또는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작업에 대한 안전 및 방호
4. 법 제125조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이 해양항만관청의 명에 따라 수행하는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점검과 안전 진단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4. 9. 19.]

제47조의7(제복의 제공) 법 제82조제7항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제복의 제공 기준 및 복제는 별표 5의3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7. 7.]

[종전 제47조의7은 제47조의8로 이동 <2015. 7. 7.>]

제47조의8(선원의 준수사항) 법 제83조제1항에서 “선내 작업 시의 위험 방지와 선내 위생의 유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
2. 선내 위험장소임을 알리거나 선원의 접근이 금지·제한되는 장소임을 알리는 표지에 표시된 지시에 따를 것
3. 화물창 안에서의 작업, 용접작업, 도료작업,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는 작업, 전기를 사용하는 작업, 어로작업, 높은 곳에서의 작업, 선체 외부작업 및 얼음을 제거하는 작업 등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벨트, 안전그물망 및 구멍의 등의 보호기구나 장비를 사용할 것
4. 거주환경의 청결유지 등 개인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 것

[본조신설 2014. 9. 19.]

[제47조의7에서 이동 <2015. 7. 7.>]

제48조(의사의 승무) ①선박소유자는 법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2통을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5., 2008. 3. 14., 2012. 5. 18.>

1. 선박의 명칭·종류·총톤수 및 항행구역
2. 최대 탑재인원 및 승선인원
3. 승인을 얻고자 하는 기간

4.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유

②지방해양항만관청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85조에 따른 의료관리자를 반드시 승무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7. 12. 15., 1999. 6. 24., 2008. 3. 14., 2012. 5. 18.>

③법 제84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모선식(母船式)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이란 총톤수 5천톤이상의 어선으로서 승선인원이 200인이상의 어선을 말한다.<개정 1997. 12. 15., 2008. 3. 14., 2012. 5. 18., 2013. 3. 24.>

제49조(의료관리자) ① 삭제 <2007. 4. 13.>

②법 제85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총톤수 300톤이상의 어선을 말한다. 다만, 평수구역·연해구역 또는 근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어선을 제외한다.<개정 1997. 12. 15., 1999. 6. 24., 2008. 3. 14., 2012. 5. 18., 2013. 3. 24.>

[제목개정 1999. 6. 24.]

제50조(의료관리자자격시험) ①법 제85조제3항에 따른 의료관리자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의료관리자자격시험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시행하는 실기교육과정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05. 10. 17., 2008. 3. 14., 2012. 5. 18., 2013. 3. 24., 2016. 1. 13.>

1. 필기시험: 의료관계법령, 기초응급처치학, 기초간호학 및 공중보건학

2. 실기시험 : 구급처치법 및 간호법

②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관리자자격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시험일시·시험장소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17., 2014. 9. 19.>

③제1항에 따른 의료관리자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응시원서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18.>

④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의료관리자자격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개정 2012. 5. 18., 2022. 12. 2.>

⑤의료관리자자격시험중 필기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9. 6. 24.]

제50조의2(의료관리자 자격시험의 합격기준) ①제50조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평균이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제50조제1항에 따른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있어서는 과목별 실기시험 평가자로부터 매 과목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본조신설 2007. 4. 13.]

제51조(의료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①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의료관리자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발급신청서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1991. 2. 22., 1997. 12. 15., 1999. 3. 24., 1999. 6. 24., 2005. 10. 17., 2012. 5. 18., 2022. 12. 2.>

②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의료관리자 자격증을 발급(정보통신망을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선원수첩에 의료관리자의 자격이 있음을 기록(정보통신망을 통한 기록을 포함한다)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선원수첩을 발급한 지방해양항만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정보통신망을 통한 통보를 포함한다)해야 한다.<개정 1991. 2. 22., 1997. 12. 15., 1999. 3. 24., 1999. 6. 24., 2005. 10. 17., 2008. 3. 14., 2012. 5. 18., 2017. 1. 18., 2022. 12. 2.>

[제목개정 1999. 6. 24., 2012. 5. 18.]

제52조(의료관리자의 업무) ①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의료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6. 24., 2012. 5. 18., 2014. 1. 8.>

1. 선원의 건강관리 및 보건지도
2. 선내의 작업환경위생 및 거주환경위생의 유지
3. 식료 및 용수의 위생유지
4. 의료기구, 의약품, 그 밖의 위생용품 및 의료서적 등의 비치·보관 및 관리
5. 선내의료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관리
6. 선내환자의 의료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기구, 의약품 등의 비치·보관 및 관리는 의료관계 법령과 국제노동기구의 「선내의료함 내용물에 관한 권고」에 따른다. 이 경우 의약품 등의 비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4. 1. 8., 2021. 2. 19.>

③ 선장 및 의료관리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표준의료보고서에 따라 선내환자의 의료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성된 내용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8., 2023. 7. 14.>

[제목개정 1999. 6. 24.]

제52조의2(건강검진의료기관) ①법 제87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의원”이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7. 4. 13., 2008. 3. 14., 2008. 8. 28., 2012. 5. 18., 2013. 3. 24., 2015. 7. 7.>

1. 연근해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의 경우 : 「의료법」에 따른 의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2. 그 밖의 선원의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에 따른 건강검진기관(해당 건강검진기관과 동등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②선원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하는 의원은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진 의료기관 신고를 수리한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이를 다른 지방해양항만관청에 통보(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08. 3. 14., 2013. 3. 24.>

[본조신설 2005. 10. 17.]

제53조(건강진단) ①평수구역·연해구역 또는 근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검사항목이 포함된 일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3. 7. 31., 1997. 12. 15., 1999. 3. 24., 2001. 7. 26., 2012. 5. 18.>

1. 감각기, 순환기, 호흡기 및 신경계 기타 기관의 임상의학적 검사
2. 시력·색각(「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직원 및 갑판부당직 부원만 해당한다) 및 청력의 검사
3. 운동기능검사
4. 신장·체중·흉위·흉위차·폐활량·혈압·혈당(당뇨)검사·간장검사(SGOT·SGPT) 및 비형간염항원검사
5. 엑스선검사·적혈구침강속도검사·객담검사 및 결핵에 관한 엑스선흉부검사
6. 매독반응검사
7. 소변 및 대변 검사
8. 정신질환 및 감염병검사
9. 삭제<1999. 3. 24.>

②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중 건강진단을 행하는 의사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 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혈압검사·혈당(당뇨)검사·간장검사(SGOT·SGPT)·비형간염항원검사·엑스선검사 및 소변검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 12. 15., 1999. 3. 24.>

③「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은 일반건강진단 외에 다음 각 호의 검사항목이 포함된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3.>

1. 씨비씨(빈혈)검사
2. 소변검사(특별검사)
3. 매독반응특별검사

④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의 판정기준은 별표 5의4에 의한다.<개정 2022. 12. 2.>

⑤ 삭제<1999. 3. 24.>

제54조(건강진단의 유효기간) 제53조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1년(색각검사에 대하여는 6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2년(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1년)으로 하되, 항해중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항해가 종료될 때(어선 외의 선박에 승선한 선원에 대한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이 항해 중 만료되고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 후 항해가 종료될 때까지 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의 유효

기간 만료 후 3개월)까지로 한다. <개정 1997. 12. 15., 1999. 3. 24., 2001. 7. 26., 2012. 5. 18., 2014. 1. 8.>

제54조의2(건강진단서 발급) 제87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서의 발급은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의한다. 다만, 의료기관은 건강진단서의 발급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0. 17., 2012. 5. 18.>

[본조신설 2000. 3. 8.]

제55조(건강진단비용) ①법 제87조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7항에 따라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5. 10. 17., 2008. 8. 28., 2012. 5. 18., 2015. 7. 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은 선박소유자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1. 7. 26.]

제55조의2 삭제 <2012. 5. 18.>

제7장 소년선원과 여성선원 <개정 2012. 5. 18.>

제56조(소년선원의 사용승인) 선박소유자가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소년선원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승선공인신청서에 해당 선원이 18세가 되는 연월일을 빨간색글씨로 기재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7. 12. 15., 2008. 3. 14., 2012. 5. 18., 2023. 7. 14.>

[제목개정 2023. 7. 14.]

제8장 재해보상 <신설 2012. 5. 18.>

제56조의2(간병의 범위) 법 제95조제5호에 따른 간병의 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간병의 범위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 5. 18.]

제56조의3(양육책임 이행 관련 심의 청구서) 영 제3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청구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4. 7. 24.]

[종전 제56조의3은 제56조의4로 이동 <2024. 7. 24.>]

제9장 복지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 <신설 2012. 5. 18.>

제56조의4(선원정책기본계획 등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7조제4항에 따라 선원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5.]

[제5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56조의4는 제56조의5로 이동 <2024. 7. 24.>]

제56조의5(국제협력) 법 제10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 3. 24.>

1. 선원인력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정보의 교환
2. 선원노동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의 교환
3. 선원직업소개사업에 관한 교류 및 협력
4. 선원관리사업에 관한 교류 및 협력

[본조신설 2012. 5. 18.]

[제56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56조의5는 제56조의6으로 이동 <2024. 7. 24.>]

제56조의6(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위한 기관·단체의 범위) 법 제110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2019. 4. 15.>

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3. 선원의 직업소개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로서 제38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본조신설 2012. 5. 18.]

[제56조의5에서 이동 <2024. 7. 24.>]

제57조(선원 등의 교육훈련) ①영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교육내용 및 교육기간은 별표 5의5와 같다. <개정 2022. 12. 2.>

② 법 제116조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기 및 절차는 별표 5의6과 같다.<신설 2023. 7. 14.>

③ 삭제<2001. 7. 26.>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위탁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법 제1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25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의4서식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거나 선원수첩에 그 사실을 기록(정보통신망을 통한 기록을 포함한다)해 주어야 한다.<개정 1999. 6. 24., 2005. 10. 17., 2008. 3. 14., 2012. 5. 18., 2013. 3. 24., 2022. 12. 2., 2023. 7. 14., 2024. 7. 24.>

[제목개정 2023. 7. 14.]

제57조의2(교육비 등의 감면) ① 법 제117조제1항에서 “그 밖의 선원교육기관”이란 「선박직원법」 제2조제4호의3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3. 7. 14.>

② 법 제117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개정 2012. 5. 18., 2013. 3. 24., 2022. 12. 2., 2023. 7. 14.>

1. 별표 5의5에 따른 기초안전교육
2. 별표 5의5에 따른 상급안전교육

[본조신설 2009. 5. 25.]

[중전 제57조의2는 제57조의3으로 이동 <2009. 5. 25.>]

제10장 취업규칙 <신설 2012. 5. 18.>

제57조의3(취업규칙의 신고) ①선박소유자가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규칙 2부 또는 취업규칙의 전자문서 파일(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작성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선박의 취업규칙에는 선박의 정박중 선박설비의 점검·정비 및 하역등의 작업에 대한 육상지원체제와 자동화선박의 승무자격이 있는 운항사의 확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개정 1991. 2. 22., 1997. 12. 15., 2005. 10. 17., 2008. 3. 14., 2012. 5. 18., 2017. 1. 18.>

②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취업규칙의 내용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97. 12. 15., 2008. 3. 14., 2017. 1. 18.>

[본조신설 1988. 11. 8.]

[제57조의2에서 이동 <2009. 5. 25.>]

제10장의2 감독 등 <신설 2014. 9. 19.>

제57조의4(신고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선원이 해양항만관청,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선원노동위원회에 신고한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는 별표 5의7에 따른다. <개정 2015. 7. 7., 2022. 12. 2., 2023. 7. 14.>

[본조신설 2014. 9. 19.]

제57조의5(대한민국 영사의 통보 내용 등) ① 영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영사(이하 “영사”라 한다)가 외국에서 영 제49조의3제1항 각 호의 해양항만관청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영사가 수행한 사무와 관련한 보고자, 신고자 또는 그 밖의 관련자의 인적사항
2. 영사가 수행한 사무의 대상이 되는 선박의 국적, 선박명(국제해사기구번호를 포함한다), 선박소유자 및 선장의 인적사항
3. 영사가 수행한 사무의 내용(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 장소 및 사고 발생경위 등을 포함한다)

4. 관계 행정기관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영사가 수행한 사무와 관련한 자료 및 서류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49조의3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영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영 제49조의3제2항에 따른 영사의 통보 사항 개요

2. 관계 행정기관의 조치 결과 또는 향후 조치 계획

3. 관계 행정기관이 한 조치와 관련한 다른 기관

4. 그 밖에 관련 자료 및 서류

[본조신설 2014. 9. 19.]

제11장 해사노동적합증서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신설 2012. 5. 18.>

제58조(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절차) ① 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2006 해사노동협약」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1부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2006 해사노동협약」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부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8.>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8조의3에 따른 최초인증검사의 합격여부를 확인한 후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8.>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선언서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8.>

[본조신설 2012. 5. 18.]

제58조의2(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내용 및 형식) ① 법 제136조제2항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18.>

1. 선원의 최소연령

2. 건강진단서

3. 선원의 자격

4. 선원근로계약

5. 인증받은 선원직업소개소의 이용

6. 근로 또는 휴식 시간

7. 선박에 대한 승무기준

8. 거주설비

9. 선내 오락시설

10. 식량 및 조달

11. 건강, 안전 및 사고방지
12. 선내 의료관리
13. 선내불만처리절차
14. 임금의 지급
15. 송환 및 유기구제에 대한 재정보증
16.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대한 재정보증

②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형식은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 5. 18.]

제58조의3(인증검사) ① 법 제137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인증검사를 받으려는 선박 소유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인증검사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8., 2017. 1. 18.>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검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39조에 따른 해사노동인증검사관 또는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인증검사 대행기관(이하 “인증검사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58조의2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에 따른 내용이 선원관계 법령 및 「2006 해사노동협약」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인증검사 및 특별인증검사의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 따른 사유와 관련있는 내용만 해당한다. <개정 2014. 1. 8., 2017. 1. 18.>

1. 선원의 휴가에 관한 권리
2. 선원의 송환 권리
3. 「2006 해사노동협약」 사본 비치
4. 선박소유자의 선원에 대한 재해보상 책임 의무
5. 선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제공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인증검사 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서류 및 의견의 제출이나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8.>

④ 인증검사 대행기관이 인증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인증검사 종료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8., 2017. 1. 18.>

[본조신설 2012. 5. 18.]

제58조의4(중간인증검사의 시행시기 등) ① 법 제137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 기산일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3. 3. 24.>

② 법 제137조제3항에서 “선박의 국적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 3. 24.>

1. 신조선의 인도
2. 선박의 국적 변경
3. 선박소유자의 변경

③ 법 제137조제4항에서 “선박 거주설비의 주요 개조나 선박에서 노동분쟁이 발생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개정 2013. 3. 24.>

1. 선박 거주설비의 주요 개조
2. 선원의 근로조건 및 생활조건 등과 관련된 선박에서의 노동분쟁의 발생
3.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에 관한 위반행위에 따라 선원의 사망 또는 중대한 사고가 있는 경우

④ 법 제137조제6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4. 1. 8.>

1.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검사를 받거나,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형식승인을 받기 위하여 시운전(試運轉)을 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인증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2. 5. 18.]

제58조의5(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 등) ① 법 제138조제1항에 따른 최초인증검사 및 갱신인증검사에 대한 해사노동적합증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38조제3항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증서에 중간인증검사 및 특별인증검사의 검사결과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검사의 종류
2. 검사일시
3. 검사항목
4. 검사담당기관
5. 검사담당자의 성명 및 직위

③ 법 제138조제4항에 따른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138조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계산은 영 제50조의3제2항에 따른다.

⑤ 선박소유자는 해사노동적합증서(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사노동적합선언서를 분실하였거나 헐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해사노동적합증서(해사노동적합선언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나 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개정 2017. 1. 18., 2022. 12. 2.>

1. 재발급에 관한 사유서
2. 해사노동적합증서 또는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원본(헐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⑥ 해사노동적합증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급할 수 있다.<신설 2022. 12. 2.>
[본조신설 2012. 5. 18.]

제58조의6(해사노동인증검사관의 자격) ① 법 제13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2014. 1. 8., 2019. 8. 20.>

1. 대학 또는 해양수산계 전문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말한다)에서 항해 또는 기관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국제항해 선박에 2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2. 법 제125조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 또는 해운·선박안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선원관리·선원근로 또는 선박안전 분야만 해당한다)이 있는 경우
 4. 「선박안전법」 제76조 및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또는 선박검사원으로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중전의 「선박안전법」(2018년 12월 31일 법률 제1616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5. 「해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운업 관련 사업장에서 선원관리·선원근로 또는 선박안전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노동인증검사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2006 해사노동협약」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8.>
- ③ 해사노동인증검사관의 신분증은 별지 제31호의2서식과 같다.<신설 2014. 1. 8.>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해사노동인증검사관의 신분증을 발급하면 그 발급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8.>
- ⑤ 해사노동인증검사관이 법 제139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박에 승선하는 경우에는 선장 등 관계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신설 2014. 1. 8.>
[본조신설 2012. 5. 18.]

제58조의7(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신청절차 등) ① 법 제140조제1항 따라 인증검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인증검사 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1. 제58조의8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인증검사업무의 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3. 인증검사업무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내부규정
4.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검사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후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인증검사 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③ 인증검사 대행기관은 법 제140조제5항에 따라 매 반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인증검사업무의 운영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4.>

[본조신설 2012. 5. 18.]

제58조의8(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검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인증검사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인력을 7명 이상 확보할 것
3. 11개 이상의 지방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 경우 7개 이상의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각각 1개 이상의 지방사무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4. 삭제<2014. 1. 8.>

②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인증검사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58조의6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 5. 18.]

제58조의9(이의신청의 절차 등) ① 법 제141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인증검사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2주 이내에 재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4., 2017. 1. 18.>

[본조신설 2012. 5. 18.]

제58조의10(인증검사의 수수료) 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인증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12. 5. 18.]

제12장 보칙 <신설 2012. 5. 18.>

제58조의11(선박 내 게시 서류의 범위) ① 법 제151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박의 명칭
 2. 선박의 선적항(船籍港)
 3. 선박의 호출부호
 4. 국제해사기구에서 부여한 선박식별번호(IMO번호)
 5. 선박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6.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유기구제보험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상호명,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및 연락처
 7. 유기구제보험등의 유효기간
 8. 유기구제보험등이 법 제42조의2에 따른 유기구제보험등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사항을 충족하고 있다는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의 확인
- ② 법 제151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보험, 공제 또는 기금(이하 “임금채권보장보험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보험업자, 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이하 “임금채권보장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상호명,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및 연락처
 3. 임금채권보장보험등의 유효기간
 4. 임금채권보장보험등이 법 제56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보험등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사항을 충족하고 있다는 임금채권보장보험사업자등의 확인
- ③ 법 제151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재해보상보험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재해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상호명,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및 연락처
 3. 재해보상보험등의 유효기간
 4. 재해보상보험등이 법 제106조에 따른 재해보상보험등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사항을 충족하고 있다는 재해보험사업자등의 확인

[본조신설 2017. 1. 18.]

제59조(수수료) ①법 제155조에 따른 수수료는 대상자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1. 2. 22., 1999. 3. 24., 1999. 6. 24., 2005. 10. 17., 2012. 5. 18.>

1. 선원수첩의 발급 및 재발급 : 1인당 1만원
2. 각종 공인·증명 및 확인 : 1인당 1천원
3. 신청인 책임에 속하는 선원수첩정정 : 1인당 1천원

4. 승무정원증서 발급 : 1건당 2천원
5. 의료관리자자격시험 응시수수료 : 1인당 5천원
6. 각종 자격증 발급 : 1인당 2천원
7. 선원신분증명서의 정정 및 재발급 : 1인당 3천원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항만법」에 의한 항만운영 전산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업무중 법 제142조에 따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행하는 업무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이 행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1996. 4. 22., 1999. 3. 24., 1999. 6. 24., 2000. 3. 8., 2001. 7. 26., 2005. 10. 17., 2012. 5. 18.>

③대한민국의 영사가 선원에 대한 지방해양항만관청의 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액을 납부당시의 외국 환매매율로 환산하여 주재국 화폐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1997. 12. 15., 2008. 3. 14.>

④지방해양항만관청,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또는 대한민국 영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4. 8. 7., 2008. 12. 31., 2017. 1. 18.>

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제5호에 따라 납부된 의료관리자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1. 4. 1.>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해당 시험일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제4호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100분의 50

제59조의2 삭제 <2023. 7. 14.>

제59조의3 삭제 <2012. 5. 18.>

제60조 삭제 <2008. 8. 28.>

제61조(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사람에 대한 선원수첩의 교부 등) ① 지방해양항만관청은 법 제3조에 따른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제21조, 제22조,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 제34조의2,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할 수 있다.

② 외국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은 선원수첩을 교부받아 출국할 때 지방해양항만관청에게 선원수첩의 공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2. 2.]

제62조 삭제 <2026. 7. 13.>**부칙** <제830호,1985. 12. 20.>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령의 폐지) 선원식료품공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871호,1987. 12. 7.> (선박안전법시행규칙)**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선원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에는 그 적재하여야 할 구명정·단정 및 구명뗏목(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팽창식구명뗏목을 제외한다. 이하 “구명정등”이라 한다)마다 다음 각호의 인원수(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1인)의 구명정수를 승선시켜야 한다. 다만, 최대탑재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탑재하고 항해를 할 경우에는 가까운 해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인원수를 감할 수 있다.

1. 정원 40인이하의 구명정 : 2인
2. 정원 41인이상 61인이하의 구명정 : 3인
3. 정원 62인이상 85인이하의 구명정 : 4인
4. 정원 86인 이상의 구명정 : 5인
5. 단정 또는 구명뗏목 : 1인

④선장은 미리 구명정등에 그 구명정수를 배치하고 각기 그 지휘자를 정하여 두어야 한다.

⑤구명정수는 다음 각호의 업무에 종사한다.

1. 식료·항해용구·기타·물품의 구명정등에의 적재, 구명정등의 하강과 해원 및 여객의 구명정등에의 승정지휘
2. 구명정등의 운항지휘 또는 보좌
3. 구명출발사기·구명부환·기타 구명설비의 조작
4. 구명정등과 기타의 구명설비(구명등의를 제외한다)의 정비 및 관리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부칙** <제891호,1988. 11.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7호, 1990. 1.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6호, 1991. 2. 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중 신규교육과정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중 이 규칙에 의한 교육과정과 동일하다고 해운항만청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10호, 1993. 7.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호, 1996. 4. 22.> (항만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①및 ②생략

③선원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항만법에 의한 항만운영 전산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교육기관의 장이 위생관리자의 자격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되 이를 선원교육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 <제36호, 1997. 12. 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육과정 이수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중 안전 및 해난방지교육을 이수한 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초안전교육 및 상급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기초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연해구역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200톤 미만의 상선에 승무하고 있는 자는 199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70호,1998. 9. 5.>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선원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선박안전법시행령 제9조제1호”를 “선박안전법시행령 제2조제2호”로, “동령 제9조제2호”를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호”로, “동령 제9조제3호”를 “동법시행규칙 제26조제4항”으로 한다.

④생략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9호,1999. 3. 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1999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23호,1999. 6. 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중 탱커교육 및 위생교육을 이수한 자는 각각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탱커기초교육 및 의료관리자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1999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33호, 1999. 8. 24.>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선원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단서중 “해난”을 “해양사고”로 한다.

⑩내지 ⑮생략

부칙 <제141호, 1999. 9. 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초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로로여객선에 승무하고 있는 부원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초안전교육 및 로로여객선교육의 기초교육을 이수한 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초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기타 여객선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로로여객선외의 여객선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타 여객선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1999년 9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60호, 2000. 3. 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선원수첩을 재교부받는 경우에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원수첩재교부 수수료를 면제한다.

부칙 <제197호, 2001. 7. 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여객선교육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중 로로 여객선교육 또는 기타여객선교육을 이수한 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객선상급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국제항해에 사용하는 여객선에 부원으로 승무하고 있는 자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객선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22호, 2002. 6.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호, 2004. 8. 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항질서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호, 2005. 10. 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7조, 제38조 및 제59조의 개정규정중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6조제1항제3호의2 및 제39조 내지 제39조의4의 개정규정중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의 선박소유자의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초안전교육 이수대상자의 적용유예) 이 규칙 시행 당시 20톤 이상 25톤 미만의 어선에 승무하고 있는 선박직원은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안전교육을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수할 수 있다.

③(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선원수첩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67호, 2007. 4.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1호, 2007. 8.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0호, 2007. 11. 23.>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을 “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으로, “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을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으로, “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을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45조제3항 중 “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 동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급법인 ”을 “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으로 한다.

제53조제3항 중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을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 ”으로 한다.

⑦ 부터 ⑭ 까지 생략

제24조 생략

부칙 <제408호, 2008. 2. 4.>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3제1호 중 “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 ”를 “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 ”로 한다.

②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제4호, 2008. 3. 14.>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호, 2008. 3. 31.>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3 제2호 및 제3호 중 “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을 각각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부칙 <제45호, 2008. 8.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호, 2008. 12.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호, 2008. 12. 31.>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방해양수산관청”을 “지방해양항만관청”으로 한다.

제59조제4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내지 1쪽 중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AND PORT”를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로 하고, 같은 서식 내지 53쪽 중 “THE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AND PORT”를 “THE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로 한다.

별지 제17호의8서식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THE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를 “THE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중 “the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를 “the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로 한다.

⑫ 부터 2@ 까지 생략

부칙 <제132호, 2009. 5. 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교육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7호, 2009. 7. 1.>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비고란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5호, 2011. 4.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호, 2011. 4. 1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5호, 2012. 5.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0조, 제40조, 제46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5조제3항(「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의 규정 : 「2006 해사노동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 되는 날
2. 제42조의 개정규정: 이 규칙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3.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 2015년 2월 6일
4. 제5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이 규칙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5. 제53조제1항제2호·제8호, 제54조, 별표 2(선박보안교육에 관한 개정규정만 해당한다)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이 규칙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해당 종전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규정은 법률 제11024호 선원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적용되는 종전의 「선원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선원 거주설비의 점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출항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4조(선원의 송환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출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선원근로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작성하는 선원근로계약서부터 적용한다.

제6조(의료관리자자격시험의 시험과목 및 합격자 공고에 관한 적용례) ① 제5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4호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② 제5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7조(건강진단의 실시 및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1항제2호·제8호 및 제54조의 개정규정(색각검사의 유효기간에 관한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은 부칙 제1조제5호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출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부터 적용한다.

제8조(선원의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의 개정규정(교육기간에 관한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교육훈련을 받는 선원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선박보안교육에 관한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은 부칙 제1조제5호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국제항해에 종사하기 위하여 출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부터 적용한다.

제9조(선원건강진단의 판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5호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건강진단을 받는 선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에 따른 판정기준(색각판정기준만 해당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 8.>

1.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라 해기사의 면허(통신사와 기관사만 해당한다)를 받은 사람
2.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종전의 별표 3에 따른 판정기준을 적용한 입학전형을 거쳐 2013학년도에 지정교육기관에 입학한 사람을 포함한다) 및 지정교육기관을 졸업한 사람

제10조(위험물적재선박승무 자격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제42조의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증명되거나 발급받은 위험화물적재선박의 승무자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명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1. 종전의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험화물적재선박의 승무자격: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험화물적재선박의 승무자격
2. 종전의 제4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험화물적재선박의 승무자격: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험화물적재선박의 승무자격

② 제1항에 따라 증명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보는 위험물적재선박의 승무자격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지닌다.

제11조(구명정 조종사 자격 및 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증명되거나 발급받은 구명정수자격 및 고속구조정수자격은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명되거나 발급받은 구명정 조종사 자격 및 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증명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보는 구명정 조종사 자격 및 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의 유효기간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5년으로 한다.

제12조(상급안전교육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상급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급안전교육의 유효기간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5년으로 한다.

제13조(상급안전교육의 재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 비고 제 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개정규정 및 부칙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상급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선박보안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별표 2의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에서 12시간 이상의 보안교육을 받은 사람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박보안 상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4호 표 외의 부분 중 “「선원법」 제3조제5호”를 “「선원법」 제2조제6호”로 하고, 같은 호 비고란 제1호 중 “「선원법」 제3조제5호”를 “「선원법」 제2조제6호”로 하며, 같은 표 제4호의2 중 “「선원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를 “「선원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로 한다.

②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3항 후단 및 제37조의2제3항 후단 중 “「선원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선원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로 한다.

③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6조 및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제12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7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④ 선원의안전및위생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선원법 제76조 및 제81조”를 “「선원법」 제82조·제83조 및 제91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1항”을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제5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6조제2항에서 ” 위험한 선내작업“이라 함은”을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위험한 선내작업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를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81조제4항”을 “법 제91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81조제5항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항해“란”을 “법 제91조제5항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항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81조제6항”을 “법 제91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호, 2013. 3. 24.>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 까지 생략

2#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2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 제4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국토해양부령 제465호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20조의 개정규정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의 개정규정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제41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제47조제2항제3호,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2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56조의4제3호, 제57조제4항, 제58조의6제2항, 제58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58조의9제1항·제2항, 별표 2 비고의 제6호·제9호, 별지 제16호서식 내지 35쪽, 별지 제17호의6서식, 별지 제17호의8서식, 별지 제17호의9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2쪽·3쪽·4쪽,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 서명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의2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내지 1쪽 중 “대한민국 국토해양부장관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REPUBLIC OF KOREA”를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내지 35쪽 및 별지 제24호서식 중 “THE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각각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별지 제16호의2서식 앞쪽 중 “MLTM (For details of authority see over) Phone No. +82 - 2 - 2110 - 8574”를 “MOF (For details of authority see over) Phone No. +82 - 44 - 201 - 4073”로, “sidinfo@mltm.go.kr, WWW.sid.go.kr Jungang - Dong, Gwacheoun - City, Gyeonggi - Do, 427 - 712”를 “sidinfo@mof.go.kr WWW.sid.go.kr #11, Doum - ro 6, Sejong Special Self - governing City, 339 - 012”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대한민국 국토해양부장관 KOR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AND PORT”를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 KOR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3쪽·4쪽 중 “the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각각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2쪽 중 “The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2\$ 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63호,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호, 2014. 1.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 및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를 신청한 경우는 제5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9호, 2014. 9.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9조의5, 제39조의6, 제47조의6, 제47조의7, 제57조의4, 별표 5의2 및 부칙 제3조: 「2006 해사노동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
2.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제50조제2항, 별표 2, 별지 제18호의2서식, 별지 제2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 2015년 2월 6일

제2조(선박조리사교육 등에 관한 특례) ① 제1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선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2015년 2월 6일 전에 선박조리사교육 및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별표 2, 별지 제18호의2서식, 별지 제2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선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2015년 2월 6일 전에도 제47조의5, 별지 제18호의2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박조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선원의안전및위생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10호, 2014. 11. 19.>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해양경찰관서의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관서의 장”으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127호, 2014. 12. 31.> (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초안전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기초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연해구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어선(20톤 이상 25톤 미만 어선을 제외한다)의 부원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원양어선의 갑판장 또는 조기장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조(여객선기초교육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외의 여객선에 부원으로 승무하는 사람은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여객선기초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별표 2에 따른 여객선기초교육을 받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에 부원으로 승무한 사람은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여객선기초교

육의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조(재교육 면제자에 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의 비고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호에 따라 재교육이 면제된 교육의 유효기간이 1년 미만 남은 사람은 그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 동안 해당 교육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연장된 교육의 유효기간 동안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재교육을 마친 때부터 해당 교육의 새로운 유효기간을 기산한다.

부칙 <제148호, 2015. 7.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객선선장에 대한 적성심사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제3항에 따라 여객선선장의 승선공인을 받은 사람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3년(승선공인을 받은 여객선선장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2년)간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3호, 2016. 1.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원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42조제1항제2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4호나목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유조선, 케미칼탱커 또는 액화가스탱커의 승무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이 규칙 시행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제42조제1항제2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각각 유조선, 케미칼탱커 또는 액화가스탱커에 승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조선, 케미칼탱커 또는 액화가스탱커에 승무할 수 있는 사람의 승무자격 유효기간(이 규칙 시행 이후 제42조제5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승무자격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승무자격의 효력을 계속 유지시킨 사람 또는 승무자격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승무자격의 효력이 상실된 후 승무자격을 되살린 사람의 경우에는 새로 받은 승무자격의 유효기간을 말한다)은 제4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유조선, 케미칼탱커 또는 액화가스탱커에 승무할 수 있는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승무자격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 제42조제5항에 따라 승무자격의 효력을 계속 유지시키거나 승무자격의 효력이 상실된 후 승무자격을 되살리려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탱커기초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해양수산연수원장이 시행하는 해기능력평가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3조(선원건강진단 판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3 가목(5)에 따른 색각 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은 사람은 개정규정에 따른 색각 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4호, 2016. 6. 30.>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선원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선원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일괄공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217호, 2017. 1. 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21호, 2017. 1.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호, 2017. 3. 1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9호, 2017. 7.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원수첩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선원수첩은 2018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51호, 2017. 7. 28.>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호, 2018. 5. 25.>

이 규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호, 2019. 4. 15.>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별표 3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6호, 2019. 8. 20.>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항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같은 법”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박안전법」”으로 한다.

제58조의6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선박안전법」 제76조 및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또는 선박검사원으로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종전의 「선박안전법」(2018년 12월 31일 법률 제1616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370호, 2019. 11.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20년 3월 31일 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402호, 2020. 4. 6.>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8호, 2021. 2. 19.>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6호, 2021. 6. 3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8호, 2022. 12.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취업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 및 별지 제9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선원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81호, 2023. 2. 3.>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4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에 따른 대형저인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3.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에 따른 대형선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⑥부터 1*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592호, 2023. 3. 1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6호, 2023. 7.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원수첩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선원수첩은 재발급 시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624호,2023. 9. 27.>

이 규칙은 2023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4호,2024. 3.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4호,2024. 7. 24.>

이 규칙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7호,2026. 7. 13.>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
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6. 30.>

선장이 통보하여야 할 사항(제6조제2항관련)

| 이상한 기상의 종류 | 통보하여야 할 사항 |
|--|--|
| 1. 열대성 폭풍우 또는 기타 풍속이 매초 24.5미터 이상의 바람을 동반한 폭풍우 | 가. 일시 및 위치
나. 3시간동안의 기압변화의 상황
다. 풍향(진방위에 의한다)·풍력 및 풍속
라. 파도의 진행방향(진방위에 의한다)·주기·파장 기타 해면의 상태
마. 선박의 침로(진방위에 의한다) 및 속력 |
| 2. 배의 상부구조물에 얼음을 얼게 하는 강풍 | 가. 일시 및 위치
나. 기 온
다. 표면 물온도
라. 풍향·풍력 및 풍속 |
| 3. 표류물 또는 통상 표류해역 외에 있는 유빙 또는 빙산 | 가. 일시 및 위치
나. 형 상·표류 방 향(진방위에 의한다) 및 표류속도 |
| 4. 침몰물 | 가. 일시 및 위치
나. 형상 및 깊이 |
| 5. 기타 선박의 항행에 위협을 줄 염려가 있는 이상한 기상 | 가. 일시 및 위치
나. 개 요 |

■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1외2] <신설 2017. 1. 18.>

유기구제보험등 및 재해보상보험등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제19조의3 관련)

1. 유기구제보험등

| 구 분 | 통지 시기 |
|---|--------------------|
| 가. 법 제42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유기구제보험등 계약의 체결 사실 |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4일 이내 |
| 나. 법 제42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유기구제보험등 계약의 해지 사실 | 계약의 효력소멸일부터 7일 이내 |
| 다. 법 제42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유기구제보험등 계약의 미체결 사실 | |
| 1)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에 유기구제보험등의 계약이 끝난 경우 | 같은 달 30일까지 |
| 2) 매월 11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에 유기구제보험등의 계약이 끝난 경우 | 다음 달 10일까지 |
| 3) 매월 2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유기구제보험등의 계약이 끝난 경우 | 다음 달 20일까지 |

2. 재해보상보험등

| 구 분 | 통지 시기 |
|---|--------------------|
| 가. 법 제10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재해보상보험등 계약의 체결 사실 |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4일 이내 |
| 나. 법 제10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재해보상보험등 계약의 해지 사실 | 계약의 효력소멸일부터 7일 이내 |
| 다. 법 제106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재해보상보험등 계약의 미체결 사실 | |
| 1)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에 재해보상보험등의 계약이 끝난 경우 | 같은 달 30일까지 |
| 2) 매월 11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에 재해보상보험등의 계약이 끝난 경우 | 다음 달 10일까지 |
| 3) 매월 2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재해보상보험등의 계약이 끝난 경우 | 다음 달 20일까지 |

■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2] [별표 5의5]로 이동 <2022. 12. 2.>

■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3] [별표 5의4]로 이동 <2022. 12. 2.>

■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2. 12. 2.>

선내교육훈련 및 평가계획의 수립기준(제40조의2제1항 관련)

| 구 분 | | | 주 기 | 대 상 자 |
|--------------------|---|------------------------|---|------------------------------------|
| 선내숙지훈련 | | | 수 시 | 모든 선원 |
| 해 상 인 명
안 전 훈 련 | 소 화 훈 련 | | 매월(여객선은 10일, 국제
항해여객선은 7일) | 모든 선원 |
| | 단 정 훈 련 | 퇴 선 훈 련 | 매월(여객선은 10일, 국제
항해여객선은 7일) | 모든 선원 |
| | | 구명정 강화 | 3개월 | 모든 선원 |
| | | 진 수 훈 련 | 1년 | 모든 선원 |
| 해 난 사 고
대 응 훈 련 | 선체손상 대처훈련
(충돌 및 좌초, 추진기
관 고장, 악천후대비
등) | | 3개월
(국제안전관리규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모든 선원 |
| | 인명사고시
행 동 요 령 | 해 상 추 락 | 6개월
(국제안전관리규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모든 선원 |
| | | 밀폐공간 진
입 및 구조
훈련 | 2개월
(국제안전관리규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밀폐구역의
진입 또는
구조 임무를
담당한 선원 |
| | 비상조타훈련 | | 3개월 | 모든 선원 |
| 기름유출 대처훈련 | | | 매월
(국제안전관리규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모든 선원 |
| 선박보안 숙지교육 | | | 선상직무 수행전 및 필요시 | 국제항해에 종
사하는 선박의
모든 선원 |
| 밀폐구역 진입 선내교육 | | | 2개월 | 국제항해에 종
사하는 선박의
모든 선원 |

■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1. 6. 30.>

항해당직 기준의 작성방법(제40조의2제2항 관련)

1. 총 칙

- 가. 당직을 담당하는 해기사 또는 부원에게는 연속되는 24시간 중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이 부여되어야 한다.
- 나. 휴식시간은 2회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중 1회의 휴식은 최소 6시간 이상 계속되어야 한다.
- 다. 당직계획표는 선내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갑판부의 항해당직

- 가. 항해당직 해기사는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에 따라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 나. 항해당직 해기사는 당직업무외의 다른 임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 항해당직 해기사와 조타자의 임무는 분리되어야 하며, 기상상태·시정 등의 요소가 충분히 고려된 경우에는 해기사 단독으로 경계를 할 수 있다.
- 라. 선장은 적절한 경계를 위하여 모든 관련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마. 당직인계시 당직을 인계하는 해기사는 당직을 인수하는 해기사가 당직임무를 유효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당직을 인계하여야 한다.
- 바. 당직을 인수할 해기사는 선박의 위치·항로 및 속력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사. 교대시각에 선박의 조정 또는 피험조치가 진행 중일 경우에는 그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교대가 연기되어야 한다.
- 아. 항해당직 해기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교를 떠나지 말아야 하며, 선위 및 속력 등을 충분히 점검하여야 한다.
- 자. 항해당직 해기사는 필요시 타·기관 및 음향신호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 차. 항해당직 해기사는 상황이 허락하는 경우 선내 항해장치의 작동시험을 자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카. 항해당직 해기사는 한 당직에 적어도 한 번의 자동조타장치의 수동작동, 자기컴퍼스와 자이로컴퍼스의 오차측정을 하여야 하며, 기타 항해등·신호등·항해장치 및 무선통신장치를 규칙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타. 항해당직 해기사는 시정제한, 선박폭주 구역의 항해, 물표의 탐지 및 플로팅 등을 위하여 레이더를 사용하여야 한다.
- 파. 항해당직 해기사는 시정제한, 기타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선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하. 연안 및 선박폭주 구역에서는 최신정보에 의하여 소개정된 가장 큰 축척의 해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거. 선장 및 항해당직 해기사는 도선사의 승선시 도선사와 긴밀히 협조하되, 도선사의 승선으로 선장 및 항해당직 해기사 임무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님을 고려하여 선박의 이동에 관하여 계속 점검하여야 하며, 도선사의 조치 등에 의심이 갈 경우 도선사의 명확한 설명을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너. 선장은 필요시 정박 중에도 항해당직을 계속 유지시켜야 하며 선위의 확인 및 선내순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기관부의 항해당직

가. 기관당직이란 당직을 구성하는 자가 기관구역에 있는 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기관구역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당직을 말한다.

나. 기관당직 해기사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동과 유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다. 당직을 인계할 경우에는 당직을 인수하는 해기사가 당직임무를 유효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당직을 인계하여야 한다.

라. 당직을 인수할 자는 선박의 여러 시스템의 작동 등 필요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마. 기관당직 해기사는 기관실에 기관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관장과 책임을 맡겠다는 통지가 서로 이해될 때까지 기관구역의 운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바. 기관구역이 유인상태인 경우 기관당직 해기사는 항상 추진장치를 조정시킬 준비를 하여야 한다.

사. 기관실이 정기적으로 무인상태인 경우에 기관당직 해기사는 즉시 호출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호출시 즉시 기관실로 가야 한다.

아. 모든 선교의 지시사항은 즉시 이행되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기관회 회전방향 또는 속도의 변화는 기록되어야 한다.

자. 기관당직 해기사는 당직 중 수행하는 수리작업에 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차. 기관실을 운전준비 중인 상태로 둔 경우, 기관당직 해기사는 조선 중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계와 장치를 즉시 이용할 수 있는 준비상태로 두어야 한다.

카. 당직임무가 끝나기 전에 기관당직 해기사는 주기관 및 보조기계와 관련하여 당직 중 발생한 모든 사건을 적절히 기록하여야 한다.

타. 제한된 시정 등의 여러 가지 조건에서 기관당직 해기사는 선교의 명령이행 등 필요조치를 취할 수 있게 준비하여야 한다.

4. 무선통신의 항해당직

가. 무선통신 당직근무자는 국제통신연합(ITU)의 「전파규칙」과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상에있어서의인명의안전을위한국제협약」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무선통신당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무선통신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지정된 무선통신사는 무선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조난·긴급 및 안전통신, 무선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중대한 사건, 적어도 하루 1회의 선박위치, 전원을 포함한 무선통신설비의 상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5. 항해계획의 확인과 준비

가. 선장은 항해시작 전에 계획된 침로와 청수 등의 필요한 물품을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예정항해에 필요한 해도 등의 최신정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개정 2019. 4. 15.>

여객선 선장의 적성심사 기준(제45조의2제1항 관련)

| | | | | |
|---|---|--|----|-----------------|
| 1. 인적사항 | | | | |
| 성명 | | 생년월일 | | |
| 주소 | | | | |
| 해기사 면허증 | | 종별 | 번호 | |
| 선원근로계약 | 선사명 | | | 선박명 |
| | 항로명 | | | 기항지 |
| 2. 선장의 적성검사 항목 심사 | | | | |
| 심사항목 | | 기준 | | 심사결과 |
| ① 선장책임 운항사고 이력 | | 최근 3년 이내 2회 미만 | | [] 회 |
| ② 해당 항로 운항경력 | | 견습선장 1회 이상 또는 1등 항해사로 5회 이상 왕복 | | [] 회 |
| ③ 취항항로의 표지 숙지여부 | | 취항항로의 항로표지의 종류 및 용도에 관한 지식 | | []/[] |
| ④ 항로특성(조류, 협수로, 암초 등) 숙지 여부 | | 특정 항로의 위험요소 식별 및 항로특성에 관한 지식 | | []/[] |
| ⑤ 출항 전 감항성 검사 능력 | | 출항 시 선박의 감항성 확보를 위한 점검항목에 대한 지식 | | []/[] |
| ⑥ 비상상황 대응 능력 | | 화재, 폭발, 타기(舵器) 고장 및 퇴선 등 비상상황별 조치 사항 숙지 및 지식 | | []/[] |
| ⑦ 비상시 여객대피 및 의사 결정 능력 | | 비상시 여객 대피 방법과 절차, 군중 관리 방법, 의사결정 방법 | | []/[] |
| ⑧ 조난 통신 능력 | | 비상시 조난통신 장비 등 사용능력 | | []/[] |
| 비고 | 1. 매 항목 모두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①의 경우 선장의 종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를 심사한다.
3. ②의 견습선장 경력에는 여객을 실지 않고 공선(空船)으로 항해한 경력도 포함한다.
4. ③부터 ⑧의 경우 매 항목마다 적성심사위원회 위원 5분의 3 이상이 적합 판정을 하여야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5. 신규항로의 경우 남북한 항로처럼 정치적 상황이 고려되거나 순항여객선 항로처럼 시험운항에 많은 경비가 소요되어 시험운항이 합당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②의 해당 항로 운항경력에 대한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6. 선박의 종류, 용도, 여객정원, 운항빈도, 항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성심사 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 | | | |
| | <div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확인자 직 성명 </div> | | | |
| ※ 주의사항
(1)취업규제: 여객선선장에 대한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여객선선장으로 승무 금지
(2)여객선선장의 적성심사기준 충족 여부 서류에는 위 기준에 따른 적성검사판정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 | | |

■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개정 2021. 6. 30.>

제복 지급 기준 및 복제(제47조의7 관련)

1. 제복 지급 기준 및 시기

| 지급 대상 | 종 류 | | | | 지급수
량 | 지급주
기 | 비 고 |
|--|---------|----|----|----|-------------------------|----------|------------------------|
| | 근무
복 | 벨트 | 모자 | 신발 | | | |
| 선 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 ○ | ○ | ○ | ○ | 2벌
(하계용
/동계
용) | 2년 | 직위와 이름을 표
기한 이름표 패용 |
| 기 관 장
1등 기관사
2등 기관사
3등 기관사 | ○ | ○ | ○ | ○ | 2벌
(하계용
/동계
용) | 2년 | |
| 부 원 | ○ | ○ | ○ | ○ | 2벌
(하계용
/동계
용) | 2년 | |
| 여객안전관리선
원 및 그 밖에
제복이 필요하
다 고 인정하는 직
무 종사원 | ○ | ○ | ○ | ○ | 2벌
(하계용
/동계
용) | 2년 | |
| 비 고 1. 하계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동계는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복은 근로시간 중에 한하여 착용하며, 선박소유자가 당해 지방의 기후·근무 장소 그 밖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착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승선 근무 중 직무 수행 여건에 따라 별도의 작업복을 착용할 수 있다. | | | | | | | |

2. 제복의 종류·재질·제식 및 형상은 선박소유자가 직책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5의4] <개정 2022. 12. 2.>

선원건강진단 판정기준표(제53조제4항 관련)

가. 일반건강진단의 합격판정 기준

| 검사항목 | | 판 정 기 준 |
|------------------|-----------------|--|
| (1) 시력 | 갑판부 선박직원 및 당직부원 | 만국시력표로부터 5미터의 거리에서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
| | 기관부 선박직원 및 당직부원 | 만국시력표로부터 5미터의 거리에서 두 눈의 시력을 통합한 교정시력이 0.4 이상일 것 |
| | 통신사 | 만국시력표로부터 5미터의 거리에서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4 이상일 것. |
| (2) 체격 | | 심한 신체의 박약, 심한 흉곽발육의 불량 그 밖에 선박내의 노동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인정되지 않을 것 |
| (3) 질병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 폐, 늑막, 심장 또는 신장의 질환을 앓고 있지 않을 것 |
| (4) 청력 | | 선장 및 갑판부 선원에 있어서는 두 귀 모두, 그 밖의 해원에 있어서는 한 귀 이상이 5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속삭임을 청취할 수 있을 것. 다만, 선원으로서의 종사경력에 비추어 관련 직무의 수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
| (5) 색각 | | 선장, 기관사, 통신사, 갑판부 당직자 및 운항 당직자는 적색, 청색, 황색, 녹색의 구분이 가능할 것(색각 안경 등 교정기구 사용 가능) |
| (6) 운동기능 | | 모든 관절의 움직임이 자유롭고 손가락·손·팔뚝 또는 신체 각 부위의 부분적 또는 전체적인 결손이 없을 것. 다만, 장애의 정도가 경증이거나 보조기를 착용한 경우에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
| (7) 병후쇠약 | | 병후의 쇠약에 따라 일정기간내의 승선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을 것 |
| (8) 혈당 | | 공복시 125 mg/dl 이하일 것 |
| (9) 간장
- SGOT | | 50 IU/L 이하일 것 |

| | |
|--|--------------|
| - SGPT | 45 IU/L이하일 것 |
| <p>※ 비고</p> <p>(1) 검진 의사는 정상기준치 및 질병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한다.</p> <p>(2) 위 표의 검사항목 중 시력과 관련하여 두 눈 중 최소한 한쪽 눈의 경우에는 안구질환이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p> | |

나. 특수건강진단의 합격판정기준

| 검 사 항 목 | 정 상 기 준 치 | 판 정 기 준 |
|------------------------|------------------------|---|
| 1. CBC(빈혈) | | 검진 의사는 정상기준치 및 질병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한다. |
| - RBC | 4.2~6.3 | |
| - Hb | 남자 12.0 이상, 여자 10.0 이상 | |
| - Hct | 36.0~52.0 | |
| - MCV | 79.0~96.0 | |
| - MCH | 26.0~33.0 | |
| - MCHC | 32.0~37.0 | |
| - WBC | 4.0~10.0 | |
| 2. RPR(VDRL)
(매독검사) | | |
| 3. 소변검사 | | |

■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5의5] <개정 2023. 7. 14.>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제57조제1항 관련)

| 교육과정 | | 교육대상자 | 교육내용 | 교육기간 | 유효기간 |
|--------|------------|---|---|--------------------|------|
| 기초안전교육 | | 1. 여객선 또는 연해구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상선에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 다만, 선박의 안전 또는 오염방지 임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고 비상배치표상 비상 시 여객보조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비고란 제10호에 따른 선상훈련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2. 어선의 선박직원, 원양어선의 갑판장 또는 조기장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
3.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 | 친숙훈련, 개인의 안전 및 사회적 책임, 개인의 생존기술, 방화 및 소화, 기초응급처치, 해난방지에 관한 사항 | 4.5일(재교육의 경우에는 2일) | 5년 |
| | | 연해구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어선(20톤 이상 25톤 미만 어선을 제외한다)의 부원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원양어선의 갑판장 또는 조기장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 친숙훈련, 개인의 안전 및 사회적 책임, 개인의 생존기술, 방화 및 소화, 기초응급처치, 해난방지에 관한 사항 | 2일(재교육의 경우에는 1일) | 5년 |
| 상급안전교육 | 구명정 조종사 교육 | 1. 구명정, 구명뗏목 또는 구조정이 탑재되어 있는 선박(어선을 제외한다)에서 선장·항해사·기관장·기관사·운항장·운항사 또는 구명정 조종사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
2. 여객선의 선박직원 또는 구명정 조종사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 | 선원당직국제협약의 구명정 조종사에 관한 교육내용 | 3일(재교육의 경우에는 0.5일) | 5년 |
| | 상급소화교육 | 여객선 선박직원 및 5급항해사, 5급기관사, 4급운항사 이상의 해기사면허 소지자로서 연해구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 선원당직국제협약의 상급소화에 관한 교육내용 | 3일(재교육의 경우에는 1 | 5년 |

| | | | | | |
|--------------|-----------|---|---|---------------------|----|
| | | 로 하는 상선의 선박직원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자 | | 일) | |
| 응급처치담당자 교육 | | 1. 5급항해사, 5급기관사, 4급운항사 이상의 해기사면허 소지자로서 연해구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상선의 선박직원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
2. 응급처치담당자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 | 선원당직국제협약의 응급처치담당자에 관한 교육내용 | 3일 (재교육의 경우에는 0.5일) | 5년 |
| 고속구조정 조종사 교육 | | 구명정 조종사 교육 이수자로서 고속구조정이 탑재된 선박에서 고속구조정 조종사로 승무하고자 하는 자 | 선원당직국제협약의 고속구조정 조종사에 관한 교육내용 | 1일 | 5년 |
| 여객선 교육 | 여객선 기초 교육 | 여객선에 부원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선박의 안전 또는 오염방지 임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고 비상배치표상 비상 시 여객 보조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비고란 제10호에 따른 선상훈련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 선원당직국제협약의 교육내용(친숙훈련, 여객선 안전훈련 및 군중관리) | 2일 (재교육의 경우에는 1일) | 5년 |
| | 여객선 상급 교육 | 여객선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여객의 안전관리 임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승무하려는 사람 | 선원당직국제협약의 교육내용(여객선의 특성, 군중관리, 여객과 화물의 안전, 선박의 복원성, 위기 관리 및 인간행동의 특수성) | 4일 (재교육의 경우에는 2일) | 5년 |
| 당직부원 교육 | | 2월 이상 갑판부 또는 기관부에 승무한 자로서 항해당직부원이 되고자 하는 자(기초안전교육 이수자에 한한다) | 항해당직 요령 및 정박당직 요령 | 5일 | 없음 |
| | | 3년 이상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부원으로 승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자동화선박의 운항당직부원이 되고자 하는 자 | 선박의 운항, 기관의 운전 및 운항당직 요령 | 1월 이상 | 없음 |
| 유능부원 교육 | | 1. 갑판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 12개월 이상 승무한 사람 | 선원당직국제협약에 따른 유능부원에 관한 교 | 5일 | 없음 |

| | | | | |
|--------------|--|---|---------------------------------------|----|
| | 으로서 갑판유능부원이 되려는 사람
2.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 6개월 이상 승무한 사람으로서 기관유능부원이 되려는 사람 | 육내용(당직일반, 화물취급, 해양오염방지, 기기보수 등) | | |
| | 운항당직부원으로 12개월 이상 승무한 사람으로서 운항유능부원이 되려는 사람 | | 15일 이상 | 없음 |
| 탱커기초교육 | 유조선 또는 케미칼탱커에 선장,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또는 갑판부·기관부의 부원 또는 자동화선박의 부원으로 승무하려는 사람 | 유조선 및 케미컬탱커의 화물특성·독성·위험·인명보호 및 오염방지 등 | 3일 | 없음 |
| | 액화가스탱커에 선장,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또는 갑판부·기관부의 부원 또는 자동화선박의 부원으로 승무하려는 사람 | 액화가스탱커의 화물특성·독성·위험·인명보호 및 오염방지 등 | 3일 | 없음 |
| 가스연료추진선박기초교육 | 가스연료추진선박 국제기준이 적용되는 선박에 항해사, 통신장, 갑판부·기관부의 부원 또는 자동화선박의 부원으로 승무하려는 사람 또는 해당 선박에 선장, 기관장, 기관사, 전자기관사, 운항장, 운항사로 승무하기 위해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가스연료추진선박 직무교육을 이수하려는 사람으로서, 기초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 | 선원당직국제협약에 따른 가스연료추진선박에 관한 교육내용(위험방지, 비상대응 등) | 2일 | 없음 |
| 선박조리사교육 | 영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선박조리사가 되려는 사람 | ○ 집단급식 및 위생관리
○ 식중독 예방 및 관리
○ 그 밖에 선박조리사의 자질 향상 및 식품위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리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또 | 없음 |

| | | | | | |
|----------------|----------------------|---|--|------------------------|----|
| | | | 제외한다)의 조작에 관한 사항 | | |
| |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고속선에 승무하고자 하는 기관부 직원 | 기관의 조작에 관한 사항 | 1일
(재교육의 경우에는 0.5일) | 2년 |
| 선박
보안
교육 | 선박
보안
상급
교육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선박보안책임자로 지정받으려는 사람 | 선박보안계획, 선박보안 등급, 선박보안장비 및 시설, 선박보안 점검 및 평가, 선박보안위협 및 대응에 관한 사항 | 2일 | 없음 |
| | 선박
보안
중급
교육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선박보안책임자를 보조하려는 사람 | 선박보안계획, 선박보안 점검, 선박보안장비 및 시설, 선박보안 위협 및 대응에 관한 사항 | 1일 | 없음 |
| | 선박
보안
기초
교육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 | 선박보안장비, 선박보안 위협 및 대응에 관한 사항 | 0.5일 | 없음 |

비 고

1. 「선박직원법」 제2조제4호의3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교육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2. 연해구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으로서 국제항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 가. 상급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기초안전교육을 면제한다.
 - 나. 1997년 12월 15일부터 5년 이내에 1년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부원은 기초안전교육의 교육기간을 3일로 할 수 있다.
 - 다. 상급안전교육과정 중 구명정 조종사 교육·상급소화교육 및 응급처치담당자교육을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기간을 5일(재교육의 경우는 2일)로 할 수 있다.
3. 삭제 <2015.1.6.>
4. 1월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1999년 6월 24일 이전에 신규교육을 이수한 자가 어선의 부원(원양어선의 갑판장 및 조기장을 제외한다)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초안전교육을 면제한다.
5. 기초안전재교육대상자가 상급안전재교육을 받는 경우 기초안전교육의 재교

육을 면제한다.

6. 유사한 과목이 중복되는 경우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중복된 과목에 대해서는 해당교육과목의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7. 삭제 <2012.5.18>

8.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한 연해구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어선의 부원(원양어선의 갑판장, 조기장을 제외한다)이 여객선 또는 연해구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상선 및 어선의 선박직원(원양어선의 갑판장, 조기장을 포함한다)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경우에 기초안전교육기간은 2일로 한다.

9. 고속선이라 함은 최대속력이 $3.7 \times \nabla^{0.1667}$ 이상인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을 말한다. 이 경우 ∇ 는 계획 흘수선에 있어서의 배수용적(m^3)을 말한다.

10. 기초안전교육, 선박보안기초교육 및 여객선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선상훈련 내용 및 실시 방법 등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선상훈련은 선원당직국제협약에 따른 친숙훈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선상훈련은 선박승선 시부터 1주일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 선상훈련은 선장 또는 상급안전교육 등을 이수한 선박직원 등이 시켜야 한다.

11. 삭제 <2012.5.18>

12. 탱커기초교육 중 유조선 및 케미칼탱커와 액화가스탱커 기초교육을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기간을 5일로 할 수 있다.

■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5의6] <신설 2023. 7. 14.>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의 내용, 시기 및 절차
(제57조제2항 관련)

1. 교육대상자 및 교육내용

| 구분 | | 교육대상자 | 교육내용 |
|----------|----------------|---|---|
| 기본
과정 | 가. 내국인
기본과정 | 1) 선원[다목1)에 따른 선원은 제외한다]
2) 선원[다목1)에 따른 선원은 제외한다]이
되려는 사람 | 선내 노동권·인권에
관한 이해 및 침해
사례와 대응 방안
에 관한 사항 |
| | 나. 외국인
기본과정 | 가목에 따른 내국인 기본과정 교육대상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 |
| 심화
과정 | 다. 내국인
심화과정 | 1) 선원 중 선장, 직원 중 기관장, 1등항
해사, 1등기관사인 사람 | 선내 노동권·인권에
관한 이해 및 침해
사례 연구, 사고
방지대책 및
예방방안에 관한 사항 |
| | | 2) 선원 중 선장, 직원 중 기관장, 1등항
해사, 1등기관사로 승무 예정인 사람 | |
| | | 3) 선박소유자 | |
| | | 4) 선원관리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선원과
관련된 노무·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
| | 라. 외국인
심화과정 | 다목에 따른 내국인 심화과정 교육대상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 대한민국 선박의
문화에 대한 이해,
선내 노동권·인권에
관한 기본 인식 및
침해 사례, 의사소통
능력에 관한 사항,
사고 방지대책 및
예방방안에 관한 사항 |

2. 교육시기 및 교육시간

가. 제1호의 교육과정별로 신규교육 및 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구분 | 교육이수 시기 | 교육시간 |
|----|---------|------|
|----|---------|------|

| | | |
|------|---|-----|
| 신규교육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이수할 것
1) 2)를 제외한 교육 대상자: 선박에 승무하기 전까지
2) 제1호다목3) 및 4)의 교육대상자: 담당 업무를 시작한 후
3개월 이내 | 3시간 |
| 재교육 | 신규교육 또는 이전 재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 2시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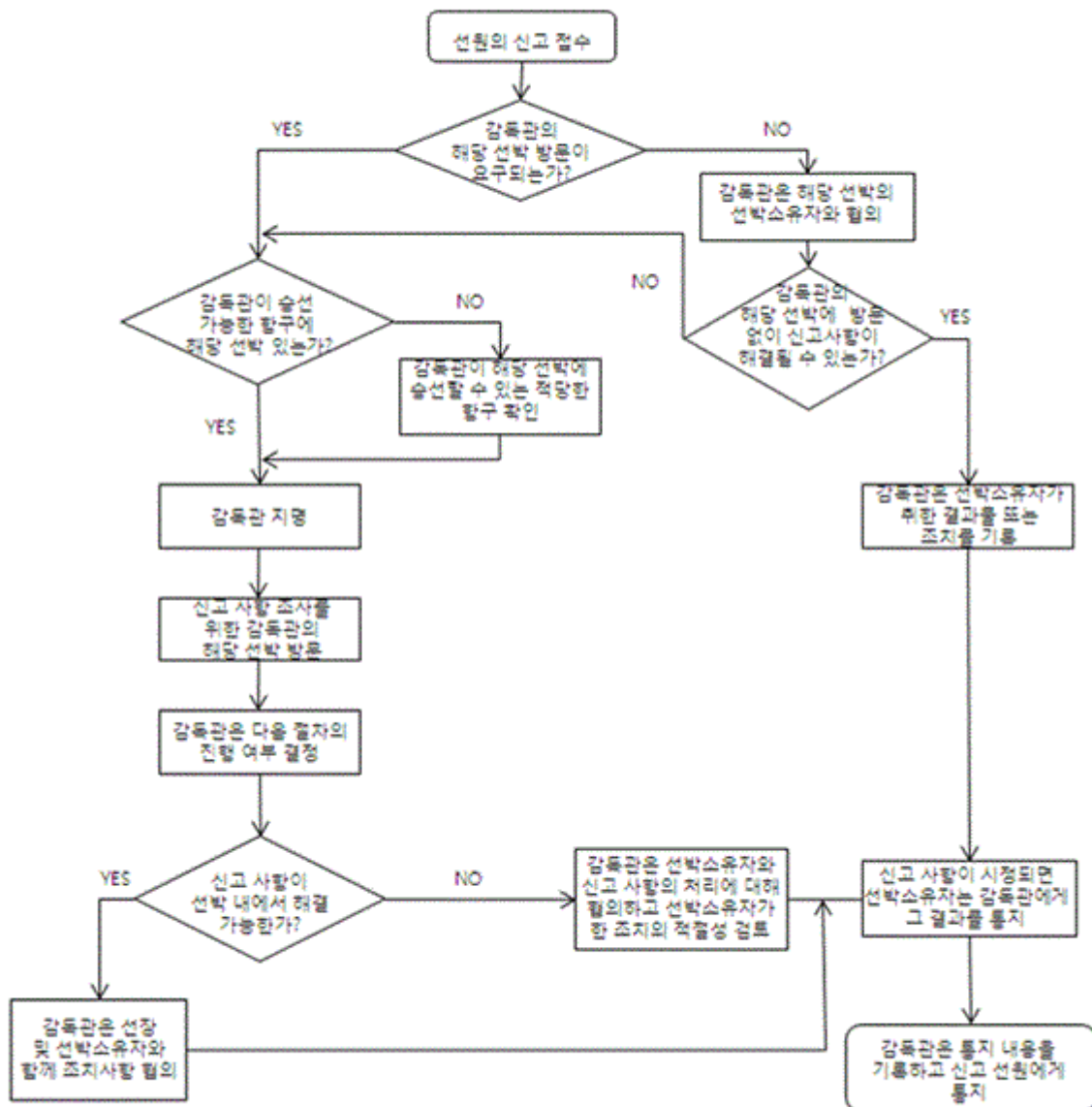
나. 교육대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까지 재교육을 받지 못한 때에는 선원, 선원이 되려는 사람은 다음 승무 전까지, 선박소유자, 선원관리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선원과 관련된 노무·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3. 교육 절차

선원 노동권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러닝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으며, 교육 운영은 위탁교육기관이 한다.

■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5의7] <개정 2023. 7. 14.>

선원의 신고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제57조의4 관련)



비고: 감독관은 법 제125조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 및 법 제139조에 따른 해사노동인증검사관을 말한다.

■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6] <신설 2012.5.18>

인증검사 수수료 (제58조의10 관련)

(단위: 원)

| 구 분 | 선박의 종류 | 기본수수료 | 수수료 |
|-----------------|-------------|--------|--------------|
| 해사노동적합선인서
승인 | | | 67,360 |
| 최초인증검사 | 제1군에 속하는 선박 | 67,360 | 기본수수료 × 톤수계수 |
| 갱신인증검사 | 제2군에 속하는 선박 | 84,200 | |
| 중간인증검사 | 제1군에 속하는 선박 | 50,520 | |
| | 제2군에 속하는 선박 | 67,360 | |
| 임시인증검사 | 제1군에 속하는 선박 | 50,520 | |
| | 제2군에 속하는 선박 | 50,520 | |

<비 고>

1. 위 표에 따른 선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제1군: 유조선 · 화학제품운반선 · 가스운반선 · 산적화물선 · 고속여객선 · 고속화물선 및 그 밖의 화물선

나. 제2군: 여객선 및 이동식해양구조물

2. 위 표에 따른 톤수계수는 다음과 같다.

가. 총톤수 500톤 미만: 0.8

나. 총톤수 500톤 이상 1,600톤 미만: 0.9

다. 총톤수 1,600톤 이상: 1

3. 공휴일에 하는 인증검사의 수수료는 위 표에 따른 수수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국외에서의 인증검사 수수료는 위 표에 따른 수수료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4. 인증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인증검사자의 출장에 드는 여비를 부담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6. 30.>

(표 지)

선원명부
(SEAFARER'S LIST)

선 명 (NAME OF VESSEL) :

5305-104비(1)

85.9.17 승인

190mm×268mm

(인쇄용지(2급) 60g/m²)

선 박 현 황
VESSEL CIRCUMSTANCE

| | |
|---|--|
| 선박명
NAME OF VESSEL | |
| 선박번호
OFFICIAL NO. | |
| 선적항
HOME PORT | |
| 선 종
TYPE OF VESSEL | |
| 항행구역
NAVIGABLE-AREA | |
| 총톤수
GROSS TONNAGE | |
| 주기관출력
MAIN ENGINE POWER(KW) | |
| 선주명칭 및 주소
NAME & ADDRESS OF SHIPOWNER | |
| <p>비 고 : “선종”란에는 여객선, 화객선, 산물선, 양곡운반선, 원목운반선, 광석운반선, 석탄운반선, 시멘트운반선, 자동차운반선, 핫코일운반선, 철강재운반선, 모래운반선, 냉동·냉장선, 폐기물운반선, 일반화물선, 풀컨테이너선, 세미컨테이너선, 원유운반선, 석유제품운반선, 케미칼운반선, 케미칼가스운반선, LPG운반선, LNG운반선, 기타 유조선, 견인용예선, 이안·접안용 예선(선박을 육지에 대거나 떨어뜨리는 용도로 사용되는 선박), 압항예선, 기타 예선, 관공선, 경찰정, 군함, 급유선, 급수선, 통선(용달선), 준설선, 유람선, 도선, 기타 상선 및 어선 등으로 기재합니다.</p> | |

관청기재사항(OFFICIAL DESCRIPTIONS)

[illegible]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1. 6. 30.>

(제1쪽)

선 원 명 부

선 명 :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제2쪽)

| 선 박 현 황 | |
|---|--|
| 선 박 명 | |
| 선 박 번 호 | |
| 선 적 항 | |
| 선 종 | |
| 항 행 구 역 | |
| 총 톤 수 | |
| 주 기 관 출 력 | |
| 선주명칭 및 주소 | |
| <p>비 고 : “선종”란에는 여객선, 화객선, 산물선, 양곡운반선, 원목운반선, 광석운반선, 석탄운반선, 시멘트운반선, 자동차운반선, 핫코일운반선, 철강재운반선, 모래운반선, 냉동·냉장선, 폐기물운반선, 일반화물선, 풀컨테이너선, 세미컨테이너선, 원유운반선, 석유제품운반선, 케미칼운반선, 케미칼가스운반선, LPG운반선, LNG운반선, 기타 유조선, 견인용예선, 이안·접안용 예선, 압항예선, 기타 예선, 관공선, 경찰정, 군함, 급유선, 급수선, 통선(용달선), 준설선, 유람선, 도선, 기타 상선 및 어선 등으로 기재한다.</p> | |

(제3쪽)

| 직책 | 성명 | 주민등록
번호 | 선원수첩번호 | 면허 또는
자격관계 | 승선일 | 하선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쪽)

[illegible]

비 고

1. “병원”란에는 병원명 및 병원이 위치한 지역을 함께 표기한다(예 : 부산 ○
○병원).
2. 제3쪽에 연결하여 횡으로 편철한다.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7.4.13>

(표 지)

항 해 일 지

선 명 :

5305-113비(1)

190mm×268mm

85.9.17 승인

(인쇄용지(2급) 60g/m²)

(내지 1쪽)

| 선 박 현 황 | | | | |
|---------|------|-----|------------|--|
| 선 박 명 | | | | |
| 선 박 번 호 | | | | |
| 선 적 항 | | | | |
| 항 행 구 역 | | | | |
| 총 톤 수 | | | 주기관 출력(KW) | |
| 선 주 | 명 칭 | (1) | (2) | |
| | 주 소 | | | |
| 선 장 | 성 명 | (1) | (2) | |
| | 주 소 | | | |
| | 해기면허 | | | |
| 여 객 정 원 | 1등실 | 명 | | |
| | 2등실 | 명 | | |
| | 3등실 | 명 | | |
| | 합 계 | 명 | | |

(내지 2쪽)

| 관 청 기 재 사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지 3쪽)

| 항 해 표 | | | | | | | |
|-------|-----|-----|-----|-----|-----|-----|-----|
| 출 항 | | 출 수 | | 입 항 | | 출 수 | |
| 일 시 | 항 명 | 선 수 | 선 미 | 일 시 | 항 명 | 선 수 | 선 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지 4쪽)

| 선 내 훈 련 사 항 기 록 부 | | | |
|-------------------|------|-------------|------|
| 일 시 | 훈련인원 | 훈련사항 및 조치사항 | 특기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지 5쪽)

| 항 해 중 발 생 사 항 기 록 부 | | | |
|---------------------|------|---------------|------|
| 일 시 | 발생장소 | 개 요 및 조 치 사 항 | 특기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지 6쪽)

| 항 해 중 출 생 자 기 록 부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출
생
자 | 성 명 | 한 글 | | | | 본 | 혼인 중의 자(남 · 여) | | |
| | | 영 문 | | | | | 혼인 외의 자(남 · 여) | | |
| | 출생연월일 | | 서기 년 월 일 시 분 | | | | | | |
| | 주 소 | | | | | | | | |
| | | | 세대주
성 명 | | | 세대주와의
관 계 | | | |
| 출생장소 | | | | | | | | | |
| 부 모 성 명 | | 부 | | 본 | | 모 | | 본 | |
| 작
성
자 | 선 박 명 | | | | | | | | |
| | 선 장 | | (인) | | | | | | |
| 위 기록부 송부일
시 및 송부처 | | | | | | | | | |

(내지 7쪽)

| 항 해 중 사 망 기 록 부 | | | | | |
|----------------------|-------|---|--|--------------|--|
| 년 월 일 | | | | | |
| 사
망
자 | 주 소 | 세대주
성 명 | | 세대주와의
관 계 | |
| | | | | 주민등록
번 호 | |
| | 성 명 | | | | |
| | 사망연월일 | 서기 년 월 일 시 분 | | | |
| 사 망 장 소 | | | | | |
| 사 망 사 유 | | | | | |
| 작
성
자 | 선 박 명 | | | | |
| | 선 장 | (인) | | | |
| 위 기록부 송부일
시 및 송부처 | | | | | |

[별지 제3호서식] 삭제 <1999.3.24>

[별지 제4호서식] <개정 1997.12.15>

| 속구목록(LIST OF FITTING) | | | |
|-----------------------|-----|------------------|-----|
| 년 월 일 현재 | | | |
| 선 박 명 | | 선 박 번 호 | |
| 선 종 | | 항 행 구 역 | |
| 총 톤 수 | | 주기관출력
(K W) | |
| 선주명칭 | | 선 주 주 소 | |
| 속 구 명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자 | 직책 | 성명 | 인 |

5305-324비

190mm×268mm

85.9.17 승인

(인쇄용지(2급) 60g/m²)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7. 19.>

| 항행에 관한 보고서 | | | |
|---|--|-----------|--|
| 선 명 | | 선 박 번 호 | |
| 선 적 항 | | 선 종 | |
| 총 톤 수 | | 주기관출력(KW) | |
| 선 주 명 칭 | | 선 주 주 소 | |
| 선 장 성 명 | | 해 기 면 허 | |
| 사유발생
일 시 | | 장 소 | |
| 보 고 내 용 | | | |
| 조 치 사 항 | | | |
| 「선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
|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보고자 직책 성명 (인) 또는 서명
 (전화번호)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귀하
 해양수산사무소장 </div> | | | |

5305-325보

190mm×268mm

85.9.17 승인

(신문용지 54g/m²)

■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7. 1. 18.>

유기사실인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 | | | |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3일 | | |
| 신청인 | 성명 | | | 생년월일 | | |
| | 주소 | | | | | |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 | 전자메일주소 | | | 최종 승선일 | | |
| | 유기 구제비용
미지급액 | 송환비용 | | | | |
| | | 송환수당 | | | | |
| 그 밖의 비용 | | | | | | |
| 선박상세 | 선박소유자 성명(법인명) | | | 선박소유자 생년월일(법인번호) | | |
| | 선박소유자(법인) 주소 | | | | | |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 | 선박명 | | | 선박번호 | | |
| | 선박 종류 | | | 총톤수 | | |
| | 항해구역 | | | 승선 선원수 | | |
| 선박소유자(법인) 사업개시일 | | | 선박소유자(법인) 사업정지일 | | | |
| 선박소유자의 행방불명 여부 [] 행방불명됨 [] 소재 파악 가능 | | | | | | |

「선원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사실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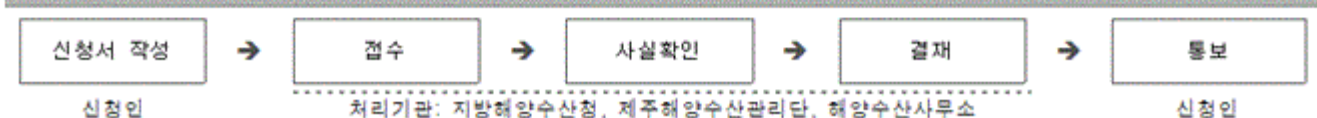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귀하
해양수산사무소장

| | | |
|------|---|--------|
| 첨부서류 | 「선원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적거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2017. 1. 18.>

유기사실 ☐ 인정 통지서 ☐ 불인정

| | |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최종승선일 | |
| | 유기사실인정 신청일 | |
| 선박상세 | 선박소유자 성명(법인명) | 선박소유자 생년월일(법인번호) |
| | 선박명 | 선박번호 |
| | 선박 종류 | 총톤수 |
| | 항해구역 | 승선 선원수 |
| 유기
구제비용
미지급액 | 송환비용 | |
| | 송환수당 | |
| | 그 밖의 비용 | |
| 불인정
사유
(해당되는
경우) | | |

귀하가 제출하신 유기사실인정신청은 「선원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 인정, ☐ 불인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해양수산사무소장**
직인

※ 참고사항

동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행정심판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6호의3서식] <개정 2022. 12. 2.>

| 일괄공인신청서 | | | | | | | | | | 처리기간 | |
|---|---|--|-------|------|---------------|------------|------|----------|-------|---------|--|
| (계 □명) | | | | | | | | | | 즉시 | |
| ①업제명 | | | ②선주국적 | | | □□ | | | | | |
| ③선명 | | | ④선박국적 | | | □□ | | | | | |
| ⑤운항형태 | | ☐ 1. 외항상선 2. 내항상선 3. 해외취업상선 4. 연근해어선
5. 원양어선 6. 해외취업어선 | | | | | | | | | |
| ⑥선박용도 | | | □□□ | | ⑦선박번호 또는 호출번호 | | | | | | |
| ⑧총톤수 | | | G/T | | | ⑨기관출력 | | KW | | | |
| ⑩항행구역 | | ☐ 1. 평수 2. 연해 3. 근해 4. 원양 | | | | | | | | | |
| ⑪교대선박 | | 선박명 | | 선박번호 | | 총톤수(G/T) | | 기관출력(KW)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⑫신청사유 | | | | | ⑬교대방법 | | | | | | |
| ⑭승선일 | | | | | 년 월 일 | | ⑮공인일 | | 년 월 일 | | |
| ⑯성명 | | ⑰주민등록번호 | | ⑱직무 | | ⑲해기사면허의 종류 | | ⑳급여 | | ㉑승선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선원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공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화 : ()</p> <p style="text-align: center;">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귀하
해양수산사무소장</p> | | | | | | | | | | | |
| 구비서류 | | | | | | | | | | 수수료 | |
| 1. 신청서 1통 2. 승무원명부 3. 선원수첩(선원보증서) | | | | | | | | | | 1인당 1천원 | |
| 주의사항 | 1. (계 □명) : 일괄공인 신청선원의 총수를 기입하십시오.
2. ②, ④항의 붉은 선안 □□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3. "⑥선박용도"란은 다음에서 택하여 관련코드를 명확하게 적으십시오.
○상선 110.여객선 120. 화객선 210. 산물선 220. 양곡운반선 230. 원목운반선 240. 광석운반선 250. 석탄운반선 260. 시멘트운반선 270. 자동차운반선 280. 핫코일운반선 290. 철강재운반선 310. 모래운반선 320. 냉동·냉장선 330. 폐기물운반선 390. 일반화물선 410. 플컨테이너선 420. 세미컨테이너선 510. 원유운반선 520. 석유제품운반선 530. 케미칼운반선 540. 케미칼가스운반선 550. LPG운반선 560. LNG운반선 590. 기타 유조선 610. 견인용예선 620. 이안·접안용 예선 630. 압항예선 690. 기타 예선 810. 관공선 820. 경찰정 830. 군함 930. 급유선 940. 급수선 950. 용달선(통선) 960. 준설편 970. 유람선 980. 도선 990. 기타 상선
○어선 031. 선망 032. 저인망 033. 트롤 034. 연승 035. 유자망 036. 채낚기 037. 봉수망 038. 안강망 039. 통발 040. 기타 어선
4. "⑬교대방법"은 근무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 | | | | | |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6호의4서식] <개정 2022. 12. 2.>

| 예비공인신청서 | | | | | | 처리기간 |
|--|---|---|------------------|----------------------|---------|-------------|
| (계 □명) | | | | | | 즉시 |
| ①업체명 | | | ②선주국적 | <input type="text"/> | | |
| ③선명 | | | ④선박국적 | <input type="text"/> | | |
| ⑤운항형태 | ☐ | 1. 외항상선 2. 내항상선 3. 해외취업상선 4. 연근해어선
5. 원양어선 6. 해외취업어선 | | | | |
| ⑥선박용도 | <input type="text"/> | | ⑦선박번호 또는
호출부호 | | | |
| ⑧총톤수 | G/T | | ⑨기관출력 | | KW | |
| ⑩항행구역 | ☐ | 1. 평수 2. 연해 3. 근해 4. 원양 | | | | |
| ⑪승선일 | 년 월 일 | | ⑫공인일 | 년 월 일 | | |
| ⑬성명 | ⑭주민등록
번호 | ⑮예비
직무 | ⑯해기사면허의
종류 | ⑰급여 | ⑱승선기간 | ⑲구직등록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선원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공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화 : (-)</p> <p style="text-align: center;">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귀하
해양수산사무소장</p> | | | | | | |
| 구비서류 | | | | | 수수료 | |
| 1. 신청서 1통 2. 승무원명부 3. 선원수첩(신원보증서) | | | | | 1인당 1천원 | |
| 주의사항 | <p>1. (계 □명) : 예비공인신청선원의 총수를 기입하십시오.</p> <p>2. ②, ④항의 굵은 선안 □□은 기입하지 마십시오.</p> <p>3. "⑥선박용도"란은 다음에서 택하여 관련코드를 명확하게 적으십시오.</p> <p>○상선 110.여객선 120. 화객선 210. 산물선 220. 양곡운반선 230. 원목운반선 240. 광
석운반선 250. 석탄운반선 260. 시멘트운반선 270. 자동차운반선 280. 핫코일운
반선 290. 철강재운반선 310. 모래운반선 320. 냉동·냉장선 330. 폐기물운반선
390. 일반화물선 410. 플컨테이너선 420. 세미컨테이너선 510. 원유운반선 520.
석유제품운반선 530. 케미칼운반선 540. 케미칼가스운반선 550. LPG운반선 560.
LNG운반선 590. 기타 유조선 610. 견인용예선 620. 이안·접안용 예선 630. 압
항예선 690. 기타 예선 810. 관공선 820. 경찰정 830. 군함 930. 급유선 940. 급
수선 950. 용달선(통선) 960. 준설회선 970. 유람선 980. 도선 990. 기타 상선</p> <p>○어선 031. 선망 032. 저인망 033. 트롤 034. 연승 035. 유자망 036. 채낚기 037. 붕수
망 038. 안강망 039. 통발 040. 기타 어선</p> | |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6. 30.>

| | | | | | | | | | | | | |
|---|---|--|------------|-----|-------|---------|---|-------|-------------|---|-----|--|
| ☐ 승선
☐ 하선
☐ 승선 취소 | | | | | | | | | | 공인신청서
(계 ☐ 명) | | 처리기간 |
| | | | | | | | | | | | | 즉시 |
| ①업체명 | | | | | | ②선주국적 | ☐ ☐ | | | | | |
| ③선명 | | | | | | ④선박국적 | ☐ ☐ | | | | | |
| ⑤운항형태 | ☐ | 1. 외항상선 2. 내항상선 3. 연근해여선 4. 원양여선 5. 해외취업상선 6. 해외취업여선 | | | | | | | | | | |
| ⑥선박용도 | ☐ ☐ ☐ | | | | | | ⑦선박번호 또는 호출부호
(IMO선박번호) | | | | | |
| ⑧총톤수 | G/T | | | | | ⑨기관출력 | kW | | | | | |
| ⑩항행구역 | ☐ | 1. 평수 2. 연해 3. 근해 4. 원양 | | | | | | | | | | |
| ⑪승선일 또는 공표(취소)일 | | | | | | ⑫공인일 | | | | | | |
| 공동기재사항 | | | 승선공인 | | | | 하선 또는 승선취소 공인 | | | | | |
| ⑬성명 | ⑭주인등록번호 | ⑮직무 | ⑯해기사면허의 종류 | ⑰급여 | ⑱승선기간 | ⑲구직등록번호 | ⑳최승선일 | ㉑최공인일 | ㉒하선/승선취소 사유 | ㉓하선/승선취소 이후 고용계약 | ㉔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원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승선·하선·승선취소 공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화 : (-)
지방해양수산청장
()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귀하
해양수산사무소장
() 대사(영사)관 귀하 | | | | | | | | | | | | ※ 구비서류
1. 신청서 1통
2. 선원명부
3. 선원수첩 또는 선원보증서
수수료
1인당 1천원 |
| 주의사항 | 1. ⑥"선박용도"란은 다음에서 택하여 관련 코드들 명확하게 적으십시오.
○상선 110. 여객선 120. 화객선 210. 산물선 220. 양곡운반선 230. 원목운반선 240. 광석운반선 250. 석탄운반선 260. 시멘트운반선 270. 자동차운반선 280. 핫코일운반선 290. 철강재운반선 310. 모래운반선 320. 냉동·냉장선 330. 폐기물운반선 390. 일반화물선 410. 풀컨테이너선 420. 세미컨테이너선 510. 원유운반선 520. 석유제품운반선 530. 케미칼운반선 540. 케미칼가스운반선 550. LPG운반선 560. LNG운반선 590. 기타유조선 610. 견인용예선 620. 이안·접안용 예선 630. 압항예선 690. 기타 예선 810. 판공선 820. 경찰경 830. 군함 930. 급유선 940. 급수선 950. 동선(용달선) 960. 군설선 970. 유탄선 980. 도선 990. 기타상선
○여선 031. 선망 032. 저인망 033. 트롤 034. 연승 035. 유자망 036. 채낚기 037. 봉수망 038. 안강망 039. 동발 040. 기타어선
2. ㉔"비고"란은 하선공인신청서 "예비원"인 경우에만 "예비원"으로 적으십시오. | | | | | | | | | | | |

210mm×297mm(보존용지(2중) 70g/m²)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05.10.17>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21. 2. 19.>

| 승선·하선변경공인신청서 | | | | | | | 처리기간 | | | |
|---|---------|----------|----------|-------------------|-------------------|-------------------------------|---------------|--|----------|----------|
| (계 □명) | | | | | | | 즉시 | | | |
| 현재승선사항 | ①업체명 | | | | | ②선박번호 또는
호출부호
(IMO선박번호) | | | | |
| | ③선박명 | | ④
총톤수 | | ()G/T | ⑤기관출력 | ()KW | | | |
| ⑥변경일 | 년 월 일 | ⑦
공인일 | | 년 월 일 | | | | | | |
| ⑧성명 | | | ⑨주민등록번호 | | | | | | | |
| 변경사항 | | | | | | | | | | |
| | ⑩
직무 | ⑪
신청인 | ⑫
선박명 | ⑬
총톤수
(G/T) | ⑭
기관출력
(KW) | ⑮
선종 | ⑯
항행
구역 | ⑰
면허
급수 | ⑱
승선일 | ⑲
하선일 |
| 기존 | | | | | | | | | | |
| 변경 | | | | | | | | | | |
| 「선원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승선·하선변경공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또는 서명
전화 : (-)

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귀하
()해양수산사무소장 | | | | | | | 구비서류 | 1. 신청서 1통
2. 선원명부
3.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
4.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 |
| | | | | | | | | 수수료
1인당 1천원 | | |

53337-41111민

297mm×210mm

95.8.24 승인

(인쇄용지(2급) 60g/m²)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6호의3서식]으로 이동 <2022. 12. 2.>

[별지 제8호의4서식] [별지 제6호의4서식]으로 이동 <2022. 12. 2.>

[별지 제8호의5서식] <개정 2017. 7. 19.>

| | | |
|--|------------------|---------------|
| 신 원 보 증 서 | | |
| 승선선박 | 선박명 | |
| | 총톤수 | |
| | 고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선원의
인적사항 |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 |
| | 주소 | |
| <div style="text-align: center;">위 사실을 확인함</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선박소유자 인 </div>

<div style="text-align: left;"> 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귀하
 해양수산사무소장 </div> | | |

53337-14811민

190×297mm

91.5.17 승인

(인쇄용지(특급) 60g/m²)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 7. 19.>

| | | | | | |
|---|-------|--------|-------------|---------------------|---|
| 선원명부 ☐ 훼손
☐ 멸실 에 따른 공인(공인확인)신청서 | | | | | 처리기간
즉 시 |
| 신청인 | ①선주명칭 | ②대표자성명 | | | |
| | ③주 소 | | | | |
| ④선 박 명 | | | ⑤선 박 번 호 | | |
| ⑥선 종 | | | ⑦항 행 구 역 | | |
| ⑧총 톤 수 | | | ⑨주기관출력(KW) | | |
| ⑩사 유 | | | | | |
| 승무원 | ⑪직 책 | ⑫성 명 | ⑬선원수
첩번호 | ⑭승선계약공인
일시 및 관청명 | ⑮승선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원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인(공인확인)을 신청합니다. | | | | | |
|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또는 서명
 (전화번호) </div> | | | | | |
| 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귀하
해양수산사무소장 | | | | | |
| ※ 첨부서류
1. 공인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
나. 사유서
2. 공인확인 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새로이 작성한 선원명부
나. 현재 승선사항이 기록된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
다. 사유서 | | | | | 수수료

1인 당
1천 원 |

5305-97민(1)

190mm×268mm

85.9.17 승인

(신문용지 54g/m²)

■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신설 2022. 12. 2.>

| 해외취업 신고서 | | | | | | 처리기간
즉 시 |
|---|-----------------|--|--------|--------|--------------------------------|--|
| 승선
사항 | ① 업체명
(관리회사) | | ② 활동수역 | | ③ 선박번호 또는
호출부호
(IMO선박번호) | |
| | ④ 선박명 | | ⑤ 총톤수 | ()G/T | ⑥ 기관출력 | ()KW |
| ⑦ 성명 | | | ⑧ 생년월일 | | ⑨ 비상연락망
(전화번호 등) | |
| <p>「선원법」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해외취업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신고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p> <p style="text-align: right;">해양수산부 장관 귀하</p> | | | | | 첨
부
서
류 | 1. 선원수첩 또는 선원보증서 1부
2. 선원근로계약서 등 해외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297mm × 210mm

(인쇄용지(2급) 60g/m²)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7. 7. 19.>

| | | | |
|---|--|----------------|--|
| 선원수첩(신원보증서) 제출 불능사유서 | | |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선원수첩번호 | |
| 직책 | | 해기면허 | |
| 선박명 | | 선박번호 | |
| 선종 | | 항행구역 | |
| 총톤수 | | 주기관출력
(K W) | |
| 선주명칭 | | 선주주소 | |
| 근로계약관계 | | | |
| 사유 | | | |
| <p>「선원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직책 성명 ㉠ 또는 서명
(전화번호)</p> <p>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귀하
해양수산사무소장</p> | | | |

5305-115일(1)

85.9.17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1999.3.24>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1999.12.15>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2005.10.17>

[별지 제13호의2서식] 삭제 <2005.10.17>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1999.3.24>

선원수첩 발급신청서

(앞쪽)

| | | | |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주의사항: 뒤쪽의 신청서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굵은 선 안에만 흑색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 | | |
| 선원수첩
명의인 | 성명 | 한글 | |
| | | 한문 | |
| | | 영문
(대문자) | 성 |
| | 이름 | | |
| |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 (-) | 국적 |
| | | | |
| 선원수첩번호 | | 선원수첩 발급일 | |
| 「선원법 시행령」 제8조 및 「선원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원수첩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div>
<div style="text-align: center;">성 명 (서명 또는 인)</div>
<div style="text-align: center;">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div> <div style="text-align: center;">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해양수산사무소장</div> | | | |
| 첨부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 수수료 |
| | <p>신청인이 아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p> <p>1.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의 것으로 합니다)</p> <p>2. 외국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p> <p>가. 여권 사본 1통</p> <p>나. 본국정부에서 발행한 선원수첩 또는 「선원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본국정부(우리나라에 주재하는 본국영사를 포함합니다)로부터 승선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받은 서류</p> | | |
| | | <p>담당공무원 확인사항</p> <p>1. 내 국인(선원수첩의 발급을 신청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18세 이상 30세 이하에 해당하는 남자만 해당합니다)의 경우에는 병적증명서</p> <p>2.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p> | <p>1인당 10,000원</p>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div> | | | |
| 결재 | | | |
| 담당 | 계장 | 과장 | |

(뒤쪽)

| | |
|------------------|--|
| 영수필증 붙이는 란 | 주민등록증 사본 붙이는 란 |
| (정부수입인지 10,000원) |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만
선원수첩 명의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부착합니다) |

위 임 장

본인은 「선원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선원수첩 발급 및 선원수첩 수령 등을 아래의 사람에게 위임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위임자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 | | | |
|---------|-----------------------|-------------|----------|
| 위임받은 사람 | 성명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 위임자와의 관계 |
| | 주소
(전화번호(자택/휴대):) | | |

※ 본인 여부 대조를 위하여 선원수첩 발급 신청 및 선원수첩 수령 시 본인과 위임받은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함께 제시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방법

1. 굵은 선 안에만 흑색으로 쓰시되,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한자 및 영문 기재란 외의 모든 기재사항은 한글로 바르게 쓰시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3. 성명의 영문란은 여권 기재사항과 동일하게 인쇄체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4. 국적란은 선원수첩 명의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국적과 영주권 부여국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5. 선원수첩에 붙일 사진은 따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6. 주민등록증 사본 붙이는 란에는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붙이시기 바랍니다.
7. 신청서를 모두 쓰신 후 영수필증 붙이는 란에 정부수입인지를 떨어지지 않게 붙이시기 바랍니다.

※ 선원수첩발급 서류의 보관·관리상 필요하니 이 신청서를 훼손하거나 접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원수첩 발급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원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선원수첩의 발급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원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
2.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4.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거짓 등에 의한 선원수첩 발급신청 금지

이 신청서에 적은 내용이나 제출한 서류에 거짓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선원법」 제174조제2호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15호외2서식] <개정 2021. 2. 19.>

(앞쪽)

| | | | | | | | |
|--|---|-------------|---|--|----|-----|----|
| 색인번호 | 선원신분증명서 발급신청서 | | | 결재 | 담당 | 계장 | 과장 |
| 접수일 | | | | | | | |
| 신청인 | 성명 | (한글) | (한문) | (영문) | | | |
|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 () | | 출생지 | | | |
| 국적 | 다른 국가에서 선원신분증명서 발급 여부 | | | ☐ 발급 ☐ 발급 않음 | | | |
| | 다른 국가에 선원신분증명서 발급신청 여부 | | | ☐ 신청 중 ☐ 신청 않음 | | | |
| 소지 선원신분증명서 번호
(최초로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 | | | | |
| 선원신분증명서 번호 | | -□□□□-□□□□□ | | 선원신분증명서
발급일 | | | |
| <p>「선원법 시행령」 제13조 및 「선원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p> <p>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귀하
()해양수산사무소장</p> | | | | | | | |
| 첨부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 수수료 | |
| | 1. 선원수첩
2. 선원신분증명서(신규 발급신청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 신청인이 아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1. 내국인(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남자만 해당합니다)의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2.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 | 없음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 | | | | | | |
| 주의사항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굵은 선 안에만 흑색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 | | | | | |

(뒤쪽)

위 입 장

본인은 「선원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본인의 선원신분증명서 수령을 아래의 사람에게 위임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위임받는 사람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100 100 100

위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선원신분증명서 수령을 위임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위임하는 경우 본인 여부 대조를 위하여 선원 신분증명서의 수령 시 본인과 위임받은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방법

1. 굵은 선 안에만 흑색으로 쓰시되,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한자 및 영문 기재란 외의 모든 기재사항은 한글로 바르게 적으시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3. 성명란의 영문은 여권 기재사항과 동일하게 인쇄체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4. 신청서에 사진을 붙인 다음에는 신청서와 사진에 걸쳐 반드시 본인이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5. 출생지는 출생한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6. 국적란은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국적과 영주권 부여국을 적으시고, 신청일 현재 다른 국적 국 또는 영주권국에서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신청 여부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 선원신분증명서 발급 서류의 보관·관리상 필요하니 이 신청서를 훼손하거나 접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원신분증명서 발급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원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원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
2.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4.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거짓 등에 의한 선원신분증명서 발급신청 금지

이 신청서에 적은 내용이나 제출한 서류에 거짓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선원법」 제174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3. 7. 14.>
(앞표지 바깥쪽)

대 한 민 국
선 원 수 첩



SEAFARER'S BOOK
REPUBLIC OF KOREA

88mm×125mm (지질 0.3mm 크로스지)
(앞표지 안쪽)

(내지 1쪽)

이 수첩의 소지인인 선원의 직무를 위하여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I hereby request all those whom it
may concern to provide the bearer, a seafarer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every possible
courtesy and protection.*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

88mm×125mm(특수용지 95g/m²)

(내지 2쪽)

대한민국 / REPUBLIC OF KOREA



수첩번호 / Seafarer's Book Number

국적 / Nationality

생년월일 / Date of Birth

성명(한글)

Surname / Given name

성별 / Sex

발급일 / Date of Issue

발급관청 / Authority

(내지 3쪽부터 10쪽까지)

| 건강진단서 | | | | |
|---|---|---|--------------------------------|-------------------------|
| CERTIFICATE OF MEDICAL EXAMINATION | | | | |
| 년 월 일 | | | | |
| 건강진단결과(Results) | 신장
(Height) | cm | 혈압
(Blood Pressure) | |
| | 체중
(Weight) | kg | 혈액형
(Blood Type) | |
| | 청력
(Hearing) | 좌LT:
우RT: | 시력
(Visual acuity) | 좌LT:
우RT: |
| | 색각
(Colour Vision) | | 흉위
(Circumference of Chest) | cm |
| | 혈액/조혈계
(Blood disorders) | | 감염병
(Infections) | |
| | 정신계
(Mental disorders) | | 피부질환
(Skin disorders) | |
| | 순환계
(Cardiovascular system) | | 신경계
(Nervous system) | |
| | 생식 및 비뇨계
(Genitourinary conditions) | | 소화계
(Digestive system) | |
| | 당뇨
(Diabetes) | | 간장
(Liver) | |
| | 호흡기 및 흉부(진찰사
(Respiratory disorders & Chest X-Ray)) | | | |
| 특수건강진단에 포함
(Special Examination Only) | 빈혈(Anemia) | | | |
| | 소변 및 매독(Urine and Syphilis) | | | |
| 선원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른
(Declaration of the seafarer's medical fitness) | 관사 시 피검사자 신분 확인 여부(Confirmation that identification documents were checked at the point of examination) | | | [] (예/Yes) [] (아니/No) |
| | 청력 충족 여부(Hearing meets the standards in the section A-1/97) | | | [] (예/Yes) [] (아니/No) |
| | 보청기 미착용시 청력 충족 여부(Unaided Hearing satisfactory?) | | | [] (예/Yes) [] (아니/No) |
| | 시력 충족 여부(Visual acuity meets the standards in the section A-1/97) | | | [] (예/Yes) [] (아니/No) |
| | 색각 충족 여부(Colour Vision meets the standards in the section A-1/97) | | | [] (예/Yes) [] (아니/No) |
| | 최근 색각검사일(Date of last colour vision test) 년 월 일 | | | |
| | 근거업무 적합성(Fit for lookout duties) | | | [] (예/Yes) [] (아니/No) |
| | 건강에 제한이나 제약사항이 있는가(Any limitations or restrictions on fitness?) | | | [] (예/Yes) [] (아니/No) |
| | 제한이나 제약사항 기술(If "Yes", specify limitations or restrictions) | | | |
| | 선원이 유선(또는 무선) 통신장치에 접근하거나 타인의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Does the seafarer suffer from any medical condition likely to be aggravated by service at sea or to render the seafarer unfit for such service or to endanger the health of other persons on board?) | | | [] (예/Yes) [] (아니/No) |
| 건강진단 실시일(Date of Examination) | | | 년 월 일 | |
| 유효기간 만료일(Date of Expiry) | | | 년 월 일 | |
| 선원의 서명
(Seafarer's signature) | | 검사 의사명 및 서명
(Name and Signature of Examiner) | | |

(내지 11쪽)

선원건강진단 항목

〈일반건강진단〉

○대상: 풍수구역·연해구역 또는 근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

○유효기간: 1년

○검사항목

1. 감각기, 순환기, 호흡기 및 신경계 그 밖의 기관의 임상의학적 검사
2. 시력·색각(「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직원 및 갑판부 당직 부원만 해당함)·청력의 검사
3. 운동기능검사
4. 신장·체중·홍위·홍위차·폐활량·혈압·혈당(당뇨)검사·간장검사(SGOT·SGPT) 및 비혈간염항원검사
5. 엑스선검사·적혈구침강속도검사·객담검사 및 결핵에 관한 엑스선흉부검사
6. 매독반응검사
7. 소변 및 대변검사
8. 정신질환 및 감염병 검사

※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검사 중 건강진단을 행하는 의사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 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음. 다만, 혈압검사·혈당검사·간장검사·비혈간염항원검사·엑스선검사 및 소변검사는 그러하지 아니함

〈특수건강진단〉

○대상: 원양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은 일반건강진단 외에 다음의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함.

○유효기간: 2년 (18세 미만의 사람은 1년)

○검사항목

1. 씨비씨(빈혈)검사
2. 소변검사(특별검사)
3. 매독반응특별검사

(내지 12쪽부터 32쪽까지 중 짝수 쪽)

| 근로계약관계
(CONTRACT OF EMPLOYMENT) | |
|------------------------------------|--|
| 선박명
(Name of Vessel) | |
| 선박부호
(Official No.) | |
| 총톤수
(Gross Tonnage) | |
| 주기관출력
(Main Engine Power) | |
| 선종
(Type of Vessel) | |
| 업종
(Type of Business) | |
| 선박소유자명
(Name of Shipowner) | |
| 선적항
(Port of Registry) | |
| 항해구역
(Navigation Area) | |
| 직책
(Duty) | |
| 승선지
(Place of Embarkation) | |
| 승선일
(Date of Embarkation) | |
| 승선계약기간
(Period of Employment) | |
| 관청승인
(Official Stamp) | |

(내지 12쪽부터 33쪽까지 중 출수 쪽)

|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변경사항
(DESCRIPTION FOR RENEWAL OR
AMENDMENT OF EMPLOYMENT CONTRACT) | | |
|--|---------------------------|-----------------------|
| 갱신 또는 변경 사유
Description for
Renewal or Amendment | 승 인 일
Date of Approval | 관 인
Approval Stamp |
| | | |
| 하 선 사 유
Reason for Disembarkation | | |
| 하 선 지
Place of Disembarkation | | |
| 하 선 연 월 일
Date of Disembarkation | | |

(내지 34쪽)

| 면 허 관 계 | | | |
|---------|----------------|---------|---------|
| 명 칭 | 유효 기 간 | 취 득 기 관 | 특 기 사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지 35쪽)

자격증번호:

(CERTIFICATE NO.)

의 료 관 리 자 자 격 증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TO PROVIDE MEDICAL CARE

성명 _____ 생년월일 _____
 (NAME) (DATE OF BIRTH)

위 사람은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및 「선원법」 제85조에 따라 의료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Regulation VI/4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as amended, and the article 85 of Seafarers Act, it is certified that the above mentioned person is qualified to provide medical care on board.

발급일

(DATE OF ISSUE)

발급기관 「선원법」 제15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ISSUED BY)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SIGNED _____

PRESIDENT OF THE KOREA INSTITUTE OF MARITIME AND FISHERIES TECHNOLOGY, AUTHORIZED BY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0 OF THE SEAFARERS ACT.

(내지 36쪽)

자격증번호:
(CERTIFICATE NO.)

기초 유조선 및 케미컬탱커 승무자격증
CERTIFICATE OF PROFICIENCY IN BASIC
OIL AND CHEMICAL TANKER CARGO OPERATIONS

성명 _____ 생년월일 _____
(NAME) (DATE OF BIRTH)

위 사람은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및 「선원법」 제64조에 따라 기초 유조선 및 케미컬 탱커 하역을 위한 승무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Regulation V/1-1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as amended, and the article 64 of Seafarers Act, it is certified that the above mentioned person is qualified in basic oil and chemical tanker cargo operations.

발급일 _____ 이 승무자격증의 유효기간을 _____까지 연장함.
(ISSUED ON) The Validity of this endorsement is hereby extended until _____
갱신일(Date of revalidation) _____

유효기간 만료일 _____ 편인(Stamp)
(Date of Expiry) 이 승무자격증의 유효기간을 _____까지 연장함.
The Validity of this endorsement is hereby extended until _____
갱신일(Date of revalidation) _____

발급기관 _____ 편인(Stamp)
(ISSUED BY) _____

대한민국
_____ 지방해양수산청장
_____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_____ 해양수산사무소장

SIGNED

DIRECTOR GENERAL
_____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JEJU OCEANS AND FISHERIES MANAGEMENT OFFICE,
DISTRICT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THE REPUBLIC OF KOREA

(내지 37쪽)

자격증번호:
(CERTIFICATE NO.)상급 유조선 승무자격증
CERTIFICATE OF PROFICIENCY IN ADVANCED
OIL TANKER CARGO OPERATIONS성명 _____ 생년월일 _____
(NAME) (DATE OF BIRTH)

위 사람은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및 「선원법」 제64조에 따라 상급 유조선 하역을 위한 승무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4 of Regulation V/1-1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as amended, and the article 64 of Seafarers Act, it is certified that the above mentioned person is qualified in advanced oil tanker cargo operations.

발급일
(ISSUED ON)

이 승무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까지 연장함.
The Validity of this endorsement is hereby
extended until
갱신일(Date of revalidation)

유효기간 만료일
(Date of Expiry)

이 승무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까지 연장함.
The Validity of this endorsement is hereby
extended until
갱신일(Date of revalidation)

발급기관
(ISSUED BY)

판인(Stamp)

대한민국

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해양수산사무소장



SIGNED

DIRECTOR GENERAL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JEJU OCEANS AND FISHERIES MANAGEMENT OFFICE,
DISTRICT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THE REPUBLIC OF KOREA

(내지 38쪽)

자격증번호:
(CERTIFICATE NO.)

상급 케미컬탱커 승무자격증
CERTIFICATE OF PROFICIENCY IN ADVANCED
CHEMICAL TANKER CARGO OPERATIONS

성명 _____ 생년월일 _____
(NAME) (DATE OF BIRTH)

위 사람은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및 「선원법」 제64조에 따라 상급 케미컬탱커 하역을 위한 승무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6 of Regulation W/1-1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as amended, and the article 64 of Seafarers Act, it is certified that the above mentioned person is qualified in advanced chemical tanker cargo operations.

발급일 _____ 이 승무자격증의 유효기간을 _____까지 연장함.
(ISSUED ON) The Validity of this endorsement is hereby
유효기간 만료일 _____ extended until _____
(Date of Expiry) 갱신일(Date of revalidation) 관인(Stamp)

발급기관 _____ 이 승무자격증의 유효기간을 _____까지 연장함.
(ISSUED BY) The Validity of this endorsement is hereby
extended until _____
갱신일(Date of revalidation) 관인(Stamp)

대한민국 _____ 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인)
해양수산사무소장

SIGNED _____

DIRECTOR GENERAL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JEJU OCEANS AND FISHERIES MANAGEMENT OFFICE,
DISTRICT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THE REPUBLIC OF KOREA

(내지 39쪽)

자격증번호:

(CERTIFICATE NO.)

기초 액화가스탱커 승무자격증
CERTIFICATE OF PROFICIENCY IN BASIC
LIQUEFIED GAS TANKER CARGO OPERATIONS

성명 _____ 생년월일 _____
 (NAME) (DATE OF BIRTH)

위 사람은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및 「선원법」 제64조에 따라 기초 액화가스탱커 하역을 위한 승무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Regulation W/1-2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as amended, and the article 64 of Seafarers Act, it is certified that the above mentioned person is qualified in basic liquefied tanker cargo operations.

발급일

(ISSUED ON)

이 승무자격증의 유효기간을

_____까지 연장함.
 The Validity of this endorsement is hereby
 extended until _____
 갱신일(Date of revolidation)

관인(Stamp)

유효기간 만료일

(Date of Expiry)

이 승무자격증의 유효기간을

_____까지 연장함.
 The Validity of this endorsement is hereby
 extended until _____
 갱신일(Date of revolidation)

관인(Stamp)

발급기관

(ISSUED BY)

대한민국

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해양수산사무소장

SIGNED

DIRECTOR GENERAL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JEJU OCEANS AND FISHERIES MANAGEMENT OFFICE,

DISTRICT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THE REPUBLIC OF KOREA

(내지 40쪽)

자격증번호:

(CERTIFICATE NO.)

상급 액화가스탱커 승무자격증
CERTIFICATE OF PROFICIENCY IN ADVANCED
LIQUEFIED GAS TANKER CARGO OPERATIONS

성명 _____ 생년월일 _____
 (NAME) (DATE OF BIRTH)

위 사람은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및 「선원법」 제64조에 따라 상급 액화가스탱커 하역을 위한 승무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4 of Regulation W/1-2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as amended, and the article 64 of Seafarers Act, it is certified that the above mentioned person is qualified in advanced liquefied tanker cargo operations.

| | |
|--|---|
| 발급일
(ISSUED ON)

유효기간 만료일
(Date of Expiry) | 이 승무자격증의 유효기간을
_____까지 연장함.
The Validity of this endorsement is hereby
extended until _____
갱신일(Date of revolidation) |
| 발급기관
(ISSUED BY) | 이 승무자격증의 유효기간을
_____까지 연장함.
The Validity of this endorsement is hereby
extended until _____
갱신일(Date of revolidation) |

대한민국
 _____ 지방해양수산청장
 _____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_____ 해양수산사무소장

SIGNED

DIRECTOR GENERAL

_____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_____ JEJU OCEANS AND FISHERIES MANAGEMENT OFFICE,
 _____ DISTRICT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THE REPUBLIC OF KOREA

(내지 41쪽)

자격증번호:
(CERTIFICATE NO.)

구명정조종사자격증
CERTIFICATE OF PROFICIENCY IN SURVIVAL CRAFT
AND RESCUE BOATS OTHER THAN FAST RESCUE BOATS

성명 _____ 생년월일 _____
(NAME) (DATE OF BIRTH)

위 사람은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및 「선원법」 제64조에 따라 구명정조종사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Regulation VI/2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as amended, and the article 64 of Seafarers Act, it is certified that the above mentioned person is qualified in survival craft and rescue boats other than fast rescue boats.

| | |
|------------------------------|--|
| 발급일
(ISSUED ON) | 이 승무자격증의 유효기간을
_____까지 연장함.
The Validity of this endorsement is hereby
extended until _____
갱신일(Date of revolidation) |
| 유효기간 만료일
(Date of Expiry) | _____ 판인(Stamp)
이 승무자격증의 유효기간을
_____까지 연장함.
The Validity of this endorsement is hereby
extended until _____
갱신일(Date of revolidation) |
| 발급기관
(ISSUED BY) | _____ 판인(Stamp) |

대한민국
_____ 지방해양수산청장
_____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_____ 해양수산사무소장

SIGNED _____
DIRECTOR GENERAL
_____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_____ JEJU OCEANS AND FISHERIES MANAGEMENT OFFICE,
_____ DISTRICT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THE REPUBLIC OF KOREA

(내지 42쪽)

자격증번호:

(CERTIFICATE NO.)

고속구조정조종사자격증

CERTIFICATE OF PROFICIENCY IN FAST RESCUE BOATS

성명 _____ 생년월일 _____
(NAME) (DATE OF BIRTH)

위 사람은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및 「선원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 따라 고속구조정조종사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Regulation VI/2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as amended, and the article 43-2 of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Seafarers' Act it is certified that the above mentioned person is qualified in fast rescue boats.

발급일

(ISSUED ON)

이 승무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까지 연장함.
The Validity of this endorsement is hereby
extended until

경신일(Date of revalidation)

권인(Stamp)

유효기간 만료일

(Date of Expiry)

이 승무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까지 연장함.
The Validity of this endorsement is hereby
extended until

경신일(Date of revalidation)

권인(Stamp)

발급기관

(ISSUED BY)

대한민국

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해양수산사무소장

인

SIGNED

DIRECTOR GENERAL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JEJU OCEANS AND FISHERIES MANAGEMENT OFFICE,
DISTRICT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THE REPUBLIC OF KOREA

(내지 43쪽)

자격증번호:

(CERTIFICATE NO.)

갑판당직 부원 자격증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FOR NAVIGATIONAL WATCHKEEPING SERVICE

성명 _____ 생년월일 _____

(NAME)

(DATE OF BIRTH)

위 사람은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및 「선원법」 제64조에 따라 갑판당직 부원으로 근무할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Regulation II/4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as amended, and the article 64 of Seafarers Act, it is certified that the above mentioned rating is qualified to engage in Navigational Watchkeeping.

발급일

(ISSUED ON)

발급기관

(ISSUED BY)

대한민국

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해양수산사무소장



SIGNED _____

DIRECTOR GENERAL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JEJU OCEANS AND FISHERIES MANAGEMENT OFFICE,
 DISTRICT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THE REPUBLIC OF KOREA

(내지 44쪽)

자격증번호:
(CERTIFICATE NO.)

기관당직 부원 자격증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FOR ENGINE ROOM WATCHKEEPING SERVICE

성명 _____ 생년월일 _____
(NAME) (DATE OF BIRTH)

위 사람은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및 「선원법」 제64조에 따라 기관당직 부원으로 근무할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Regulation III/4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as amended, and the article 64 of Seafarers Act, it is certified that the above mentioned rating is qualified to engage in Engine Room Watchkeeping.

발급일
(ISSUED ON)

발급기관
(ISSUED BY)

대한민국
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해양수산사무소장



SIGNED _____

DIRECTOR GENERAL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JEJU OCEANS AND FISHERIES MANAGEMENT OFFICE,
DISTRICT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THE REPUBLIC OF KOREA

(내지 45쪽)

자격증번호:

(CERTIFICATE NO.)

운항당직 부원 자격증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FOR GENERAL WATCHKEEPING SERVICE

성명 _____ 생년월일 _____

(NAME)

(DATE OF BIRTH)

위 사람은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및 「선원법」 제64조에 따라 운항당직 부원으로 근무할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as amended, and the article 64 of Seafarers Act, it is certified that the above mentioned rating is qualified to engage in General Watchkeeping.

발급일

(ISSUED ON)

발급기관

(ISSUED BY)

대한민국

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해양수산사무소장



SIGNED _____

DIRECTOR GENERAL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JEJU OCEANS AND FISHERIES MANAGEMENT OFFICE,
 DISTRICT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THE REPUBLIC OF KOREA

(내지 46쪽)

자격증번호:
(CERTIFICATE NO.)

갑판유능부원 자격증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AS ABLE SEAFARER DECK

성명 _____ 생년월일 _____
(NAME) (DATE OF BIRTH)

위 사람은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및 「선원법」 제2조제6호의2에 따라 갑판유능부원으로 근무할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Regulation II/5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as amended, and the subparagraph 6-2 of article 2 of Seafarers Act, it is certified that the above mentioned rating is qualified to serve as a able seafarer deck.

발급일
(ISSUED ON)

발급기관
(ISSUED BY)

대한민국

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해양수산사무소장



SIGNED

DIRECTOR GENERAL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JEJU OCEANS AND FISHERIES MANAGEMENT OFFICE,
DISTRICT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THE REPUBLIC OF KOREA

(내지 47쪽)

자격증번호:
(CERTIFICATE NO.)

기관유능부원 자격증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AS ABLE SEAFARER ENGINE

성명 _____ 생년월일 _____
(NAME) (DATE OF BIRTH)

위 사람은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및 「선원법」 제2조제6호의2에 따라 기관유능부원으로 근무할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Regulation III/5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as amended, and the subparagraph 6-2 of article 2 of Seafarers Act, it is certified that the above mentioned rating is qualified to serve as a able seafarer engine.

발급일
(ISSUED ON)

발급기관
(ISSUED BY)

대한민국

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해양수산사무소장



SIGNED

DIRECTOR GENERAL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JEJU OCEANS AND FISHERIES MANAGEMENT OFFICE,
DISTRICT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THE REPUBLIC OF KOREA

(내지 48쪽)

자격증번호:
(CERTIFICATE NO.)

운항유능부원 자격증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AS ABLE SEAFARER GENERAL

성명 _____ 생년월일 _____
(NAME) (DATE OF BIRTH)

위 사람은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및 「선원법」 제2조제6호의2에 따라 운항유능부원으로 근무할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4 of Regulation A-VII/2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as amended, and the subparagraph 6-2 of article 2 of Seafarers Act, it is certified that the above mentioned rating is qualified to serve as a able seafarer general.

발급일
(ISSUED ON)

발급기관
(ISSUED BY)

대한민국

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해양수산사무소장



SIGNED

DIRECTOR GENERAL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JEJU OCEANS AND FISHERIES MANAGEMENT OFFICE,
DISTRICT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THE REPUBLIC OF KOREA

(내지 49쪽)

자격증번호:

(CERTIFICATE NO.)

기초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
CERTIFICATE OF PROFICIENCY IN BASIC TRAINING
FOR SERVICE ON SHIPS SUBJECT TO THE IGF CODE

성명 _____ 생년월일 _____
 (NAME) (DATE OF BIRTH)

위 사람은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및 「선원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기초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를 위한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4 of Regulation V/3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as amended, and the article 42-2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of Seafarers Act, it is certified that the above mentioned person is qualified in basic training for service on ships subject to the IGF Code

발급일 _____ 이 승무자격증의 유효기간을 _____까지 연장함.
 (ISSUED ON) The Validity of this endorsement is hereby extended until _____
 갱신일(Date of revalidation) _____

유효기간 만료일 _____ 편인(Stamp)
 (Date of Expiry) 이 승무자격증의 유효기간을 _____까지 연장함.
 The Validity of this endorsement is hereby extended until _____
 갱신일(Date of revalidation) _____

발급기관 _____ 편인(Stamp)
 (ISSUED BY)

대한민국
 _____ 지방해양수산청장
 _____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인)
 _____ 해양수산사무소장

SIGNED

DIRECTOR GENERAL
 _____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_____ JEJU OCEANS AND FISHERIES MANAGEMENT OFFICE,
 _____ DISTRICT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THE REPUBLIC OF KOREA

(내지 50쪽)

자격증번호:

(CERTIFICATE NO.)

상급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

CERTIFICATE OF PROFICIENCY IN ADVANCED TRAINING
FOR SERVICE ON SHIPS SUBJECT TO THE IGF CODE

성명 _____ 생년월일 _____

(NAME)

(DATE OF BIRTH)

위 사람은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및 「선원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상급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를 위한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7 of Regulation V/3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as amended, and the article 42-2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of Seafarers Act, it is certified that the above mentioned person is qualified in advanced training for service on ships subject to the IGF Code

발급일

(ISSUED ON)

이 승무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까지 연장함.

The Validity of this endorsement is hereby

extended until

갱신일(Date of revalidation)

권인(Stamp)

유효기간 만료일

(Date of Expiry)

이 승무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까지 연장함.

The Validity of this endorsement is hereby

extended until

갱신일(Date of revalidation)

권인(Stamp)

발급기관

(ISSUED BY)

대한민국

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해양수산사무소장

(인)

SIGNED

DIRECTOR GENERAL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JEJU OCEANS AND FISHERIES MANAGEMENT OFFICE,

DISTRICT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THE REPUBLIC OF KOREA

(내지 51쪽부터 54쪽까지)

관 청 기 재
OFFICIAL DESCRIPTIONS

(뒤표지 안쪽)

유의사항

1. 선원수첩에 공인받은 승선·하선 이력은 승무경력증명서류(정본)이므로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2. 승선계약이 성립 또는 종료된 때에는 즉시 선원수첩에 승선·하선공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이 선원수첩은 승선취업 중에는 선장이 보관하여야 합니다.
4. 선원수첩이 사용불가능하게 된 때 또는 여백이 없게 된 때에는 즉시 재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선원이 외국에서 하선공인을 받지 않고 귀국한 때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관리사업자는 25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또는 해양수산사무소장)에게 신고하고 선원수첩의 공인을 받아야 합니다.
6. 선원수첩을 발급한 날 또는 하선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승선하지 않은 선원의 선원수첩은 실효가 됩니다.
7. 위의 절차를 게을리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원수첩을 사용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 선원수첩은 총 54쪽임.

This book contains 54 numbered pages.

소지인의 서명

Signature of Bearer _____

소지인 연락처(Information on Bearer)

주소(Address) _____

전화번호(Telephone No.) _____

(뒤표지 바깥쪽)

[별지 제16호의2서식] <개정 2013.3.24>

(앞 쪽)

| 대한민국 선원신분증명서 | | |
|--|------------------------------|------------------------|
| REPUBLIC OF KOREA SEAFARERS IDENTITY DOCUMENT | | |
| MCF (For details of authority see over) Phone No. +82-44-201-4073 | | |
| sidinfo@mof.go.kr WWW.sid.go.kr #11, Dongs-ro 6,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339-012 | | |
| 사진 | 성/Surname | 한글이름 |
| | 명/Given name | 성별/Sex |
| | 국적/Nationality | 출생일월년/Date of Birth |
| | 출생지/Place of Birth | 주민등록번호/Personal ID No. |
| | 신체특징/Special Characteristics | |
| | 증명서번호/Document No. | 기간만료일/Date of Expiry |
| | 발급일/Date of issue | 발급지/Place of issue |
| | 서명/Signature of Seafarer | |

86mm×54mm(플라스틱)

(덧 붙)

생체인식정보(지문)

발급관청/Issuing authority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
KOR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This document is a seafarers' identity document for the purpose of the Seafarers' Identity Documents Convention(Revised), 2003,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This document is a Stand-alone document and not a passport.

기계판독구역(MRZ)

■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3. 7. 14.>

☐ 선원수첩 ☐ 재발급
☐ 선원신분증명서 ☐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 신청인 | 성명(한글) (한문) | 생년월일 | |
| | (영문)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선원수첩(선원신분증명서) 번호 | 발급일 | |

| | | |
|------|--|---|
| 신청내용 | 재 발 급 | |
| | 신청 사유 | 기타 사유 |
| | ☐ 멸실(분실) ☐ 훼손 ☐ 여백부족 ☐ 기타 | |
| | 기재사항 정정 | |
| | 인적사항 | 기타 사항 |
| | ☐ 수첩(증명서)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국적 ☐ 성별
☐ 출생지 ☐ 기타 | ☐ 근로계약관계
☐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변경사항
☐ 자격증(☐ 의료관리자 ☐ 구명정조종사 ☐ 고속구조정조종사 ☐ 당직부원 ☐ 유능부원)
☐ 기초 승무 자격증(☐ 유조선 및 케미컬탱커 ☐ 액화가스탱커 ☐ 가스연료추진선박)
☐ 상급 승무 자격증(☐ 유조선 ☐ 케미컬 ☐ 액화가스탱커 ☐ 가스연료추진선박)
☐ 기타 |
| | 정정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 |

「선원법」 제49조 및 「선원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원수첩, ☐선원신분증명서의 ☐재발급, ☐기재사항 정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귀하

해양수산사무소장

업무처리 절차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재발급 및 정정 사실 확인 | → | 재발급 (정정 기재 포함) |
| 법제처 신청인 | | 지방해양수산청 | | 지방해양수산청 | | 지방해양수산청 국가법령정보센터 |

(뒤쪽)

| | | |
|---------------|---|--|
| 신청인
제출서류 | <재발급 신청>
1. 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 규격으로 하며, 선원수첩의 재발급만 해당합니다)
2. 선원신분증명서(선원신분증명서 재발급만 해당합니다)
3. 외국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여권 사본
나. 본국정부에서 발행한 선원수첩 또는 「선원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본국정부(우리나라에 주재하는 본국영사를 포함합니다)로부터 승선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 받은 서류

<기재사항 정정>
1. 정정 신청 대상의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
2. 기재사항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재발급
선원수첩
1인당 1만원
선원신분
증명서
1인당 3천원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내국인(재발급 및 기재사항 정정을 신청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18세 이상 30세 이하에 해당하는 남자만 해당합니다)의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2.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정정 신청
선원수첩
1인당 1천원
선원신분
증명서
1인당 3천원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원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선원수첩의 발급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원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
2.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4.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또한, 이 신청서에 적은 내용이나 제출한 서류에 거짓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선원법」 제174조제2호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

1. 굵은 선 안에만 흑색으로 쓰시되,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한자 및 영문 기재란 외의 모든 기재사항은 한글로 바르게 쓰시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성명의 영문란은 여권 기재사항과 동일하게 인쇄체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 국적 관련 기재사항 정정 시 선원수첩 명의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국적과 영주권 부여국을 정정내용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5. 선원수첩에 붙일 사진은 따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6. 수수료는 수입인자로 납부합니다. 신청서 여백에 부착해주시기 바랍니다.
- ※ 선원수첩발급 서류의 보관·관리상 필요하니 이 신청서를 훼손하거나 접지 마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 [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17호의2서식] 삭제 <2005.10.17>

[별지 제17호의3서식] 삭제 <2005.10.17>

■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4서식] 삭제 <2023. 7. 14.>

■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5서식] <개정 2017. 7. 19.>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 | | | | | |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 | |
| | 전 화 | | | 체불임금 등
(체불기간) | 임금 (원 월) |
| | 퇴직일 | 년 월 일 | 퇴직금 (원 년) | | |
| 선박
소유자 | 성 명 | |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선박명 | | | 선종
(총톤수) | []상선 []어선 []기타
(G/T) |
| | 승선 선원
수 | 명 | | 운항 또는
조업구역 |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사 업 활 동 현 황 | | 사업개시일(년 월 일), 사업정지일(년 월 일) | | | |
| 선박소유자의
행방불명 여부 | | [] 행방불명됨 [] 소재파악 가능 | | | |
| 재판상 도산의 신청 | | [] 신 청 [] 미신청 | | | |

위의 대상 선박소유자는 인정대상 선박소유자로 사업활동이 정지 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선원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 및 「선원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 해양수산사무소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퇴직 당시의 선박소유자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1부
2. 해당 선박소유자의 사업활동이 정지 중에 있고 해당 선박소유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 수수료 |
| | | 없 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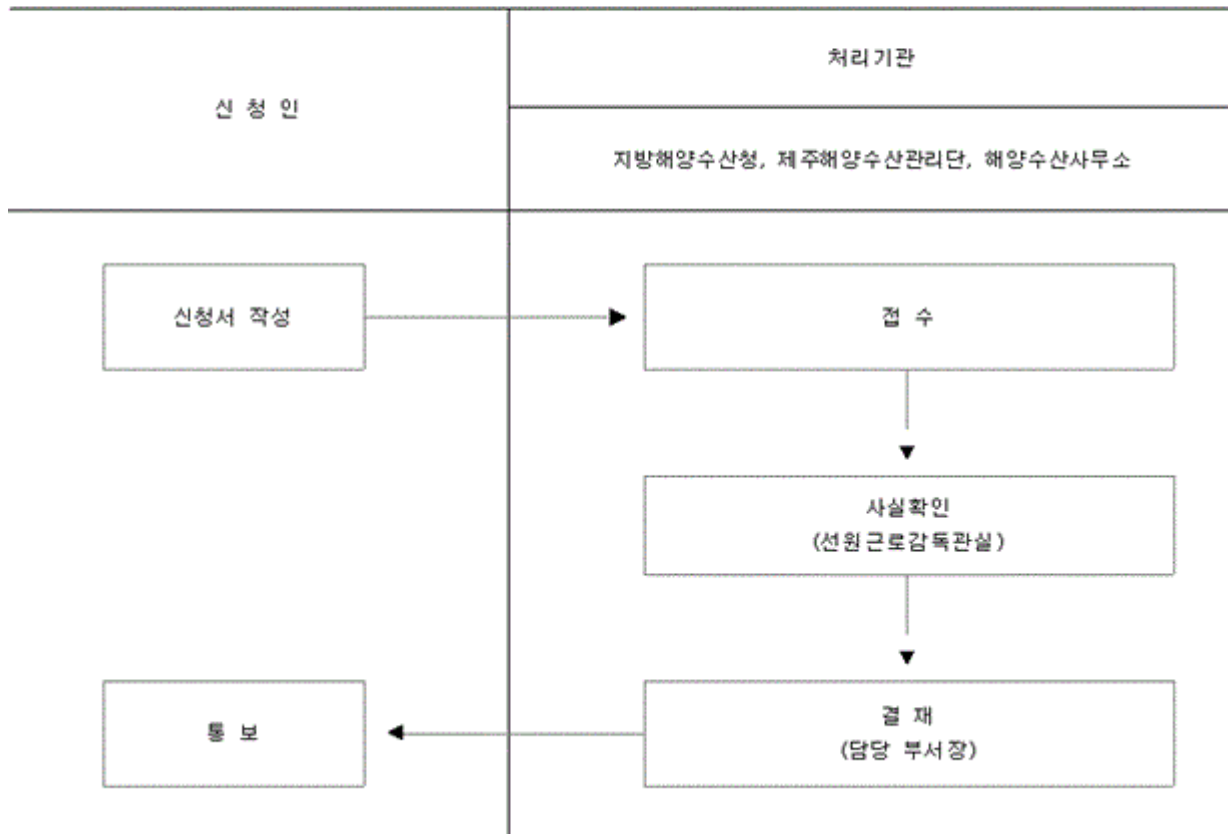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취 목)

유 의 사 항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은 선원이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선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퇴직선원이 해당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른 퇴직선원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 리 절 차



■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6서식] <개정 2017. 7. 19.>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 통지서

접수번호

| | | | | |
|-----------|-----|---|-------------|-----------------------------|
| 신청인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 | 주 소 | | | |
| | 신청일 | 년 | 월 | 일 |
| 선박
소유자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 | 선박명 | | 선종
(총톤수) | []상선 []어선 []기타
(G/T) |
| | 소재지 | | | |

귀하가 제출하신 선박소유자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은 「선원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및 「선원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 따라 (인정, 불인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상기 사업장에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퇴직한 자 중 최종 4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4년분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자는 우리청(제주 해양수산관리단 또는 해양수산사무소)에 확인신청서를 년 월 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인정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동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을 한 행정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하시기 바랍니다(불인정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년 월 일

〇〇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해양수산사무소장



210mm × 297mm [백상지 80g/m²(재활용품)]

■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 7서식] <개정 2017. 7. 19.>

체불임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 | | | | | |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14일 | |
| 신청인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전화:) | | | |
| | 승선일 | 년 월 일 | 임금 지급일 | 매월 일 | |
| 선박
소유자 | 성 명 | |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선박명 | | | 선종
(총톤수) | []상선 []어선 []기타
(G/T)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확인 신청 사항 | | 1.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 및 그 신청일
2. 퇴직일
3. 최종 4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4년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 | | |

「선원법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 및 「선원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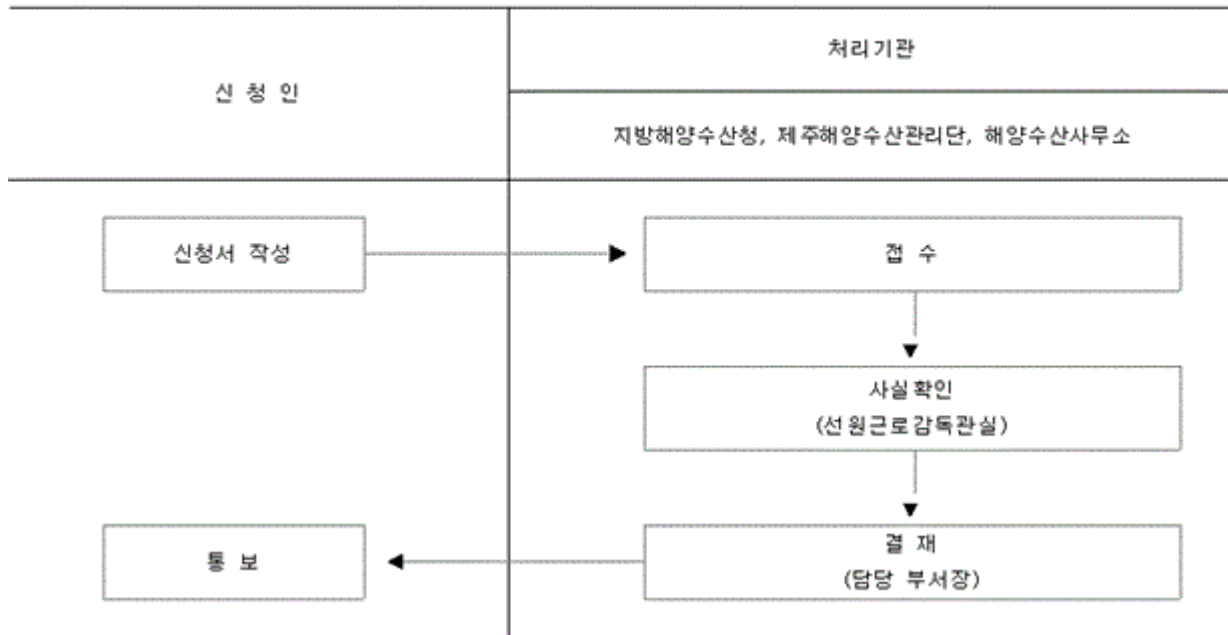
() 해양수산사무소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퇴직 당시의 선박소유자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또는 「선원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통지서 사본 1부 | 수수료 |
| | 2. 해당 선박소유자가 체불임금 등을 증명한 서류 1부(소유자가 발급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취 목)

처 리 질 차



■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 17호의 8서식] <개정 2017. 7. 19.>

체불임금 지급사유 확인통지서

접수번호

| | | | | | | | |
|-------------------|---------------------------------------|-----------|-------------|-----------------------------|----------|-------------|--|
| 신청인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 | |
| | 주 소 | | | | | | |
| | 입사일 | 년 | 월 | 일 | | | |
| 선박
소유자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 | |
| | 선박명 | | 선종
(총톤수) | []상선 []어선 []기타
(G/T) | | |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
| | 사업개시일 | | 선원수 | 명 | | | |
| 지급사유
및
지급요건 | (인정, 파산,
화의, 정리)의
인정일 또는
결정일 | 년 | 월 | 일 | 체불
임금 | 최종 1개
월분 | |
| | | 년 | 월 | 일 | | 최종 2개
월분 | |
| | (인정, 파산,
화의, 정리)의
신청일 | 년 | 월 | 일 | | 최종 3개
월분 | |
| | | | | | | 최종 4개
월분 | |
| | 신청자의
퇴직일 | 년 | 월 | 일 | | 소계 | |
| | 퇴직금 | 원 | | | | | |
| | | (평균임금×일수) | | | | | |
| 합계 | 원 | | | | | | |

귀하가 신청하신 확인사항에 대하여 「선원법 시행령」 제18조의5 및 「선원법 시행규칙」 제39조의4 본문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지합니다.

※ 동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을 한 행정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해양수산사무소장

작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9서식] <개정 2017. 7. 19.>

체불임금 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서

(앞 쪽)

| | | | | |
|-----------|-----|----------|-------------|-----------------------------|
| 신청인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 | 주 소 | | | |
| 선박
소유자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 | 선박명 | | 선종
(총톤수) | []상선 []어선 []기타
(G/T)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확인불가 사항 및 그 사유 >

귀하가 신청하신 확인사항에 대하여 「선원법 시행령」 제18조의5 및 「선원법 시행규칙」 제39조의4 단서에 따라 상기사항은 확인이 불가함을 통지합니다.

※ 동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을 한 행정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해양수산사무소장

적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안내문

※ 통지서를 보는 법

확인불가 통지서는 귀하가 제출하신 확인신청서상의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확인
한 결과 필요한 확인사항 중 "확인불가사항 및 그 사유"에 기재된 사유로 인하여 기재
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항을 통보한 것입니다.

※ 참고사항

통지서상에 기재된 확인불가사항에 대하여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가지고 제시하거나
확인불가통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또는 해양수산
사무소)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해당 관서의 전화번호>

○○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또는 해양수산사무소) 선원해사(선원선박) 담당

☎ (000) 000-0000

[Document of records of seafarer's daily hours of work, daily hours of rest and overtime]

| | |
|-------------------|--------------------------|
| 선명/ Name of ship | 성명/ Seafarer's full name |
| IMO번호/ IMO number | 직위/ Position |
| 국적/ Flag of ship | |

[illegible]

■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개정 2019. 11. 1.>

- [] ① (갑판·기관·운항) 당직부원 자격증
 [] ② (갑판·기관·운항) 유능부원 자격증
 [] ③ 위험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 (기초 유조선 및 케미컬탱커·상급 유조선·상급 케미컬탱커·기초 액화가스탱커·상급 액화가스탱커)
 [] ④ (기초·상급)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
 [] ⑤ 구명정 조종사·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증
 [] ⑥ 선박조리사 자격증
 [] ⑦ 의료관리자 자격증

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①, ②, ③, ④ 1일
⑤, ⑥, ⑦ 2일 |
|------|-----|----------------------------------|
|------|-----|----------------------------------|

| | | | |
|-----|---------|------------------|------|
| 신청인 | 성명 | (한글)
(영문) | 생년월일 |
| | 주소 | | 전화번호 |
| | 선원수첩 번호 | ※ ⑤의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 |

자격요건구비내용

| | | | | |
|--------------------|--------------------------|---|---------------|--|
| ①당직부원 | 승무경력 | []갑판부 []기관부 | 년 월 | |
| | 당직부원교육 이수일 및 과정 | | | |
| ②유능부원 | 당직부원 승무경력 | []갑판부 []기관부 | | |
| | 당직부원 자격취득 연월일 | []갑판당직부원
[]기관당직부원
[]운항당직부원 | | |
| | 유능부원 교육이수 연월일 | []갑판유능부원교육
[]기관유능부원교육
[]운항유능부원교육 | | |
| ③위험물적재선박 승무 | 승무경력 | []갑판부 []기관부 | (선종) (경력) 년 월 | |
| | 이수교육 연월일 | []탱커기초교육
[]탱커보수교육 | | |
| | 승무하려는 선박 | | | |
| ④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 | 이수교육 연월일 | []기초교육
[]직무교육 | | |
| | 승무경력 | (선종) (경력) 년 월 | | |
| ⑤구명정 조종사·고속구조정 조종사 | 해기사 면허 | | | |
| | 자격요건 구비내용 (교육이수, 승무경력 등) | | | |
| ⑥선박조리사 | 교육이수 연월일 | | 교육실시기관 | |
| | 시험합격 연월일 | | 시험실시기관 | |
| ⑦의료관리자 | 교육이수 연월일 | | 교육실시기관 | |
| | 시험합격 연월일 | | 시험실시기관 | |

위와 같이 [] 갑판() 기관() 운항() 당직부원, [] 갑판() 기관() 운항() 유능부원, [] 위험물적재선박 승무, []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 [] 구명정 조종사, [] 고속구조정 조종사, [] 선박조리사 자격증, [] 의료관리자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해양수산사무소장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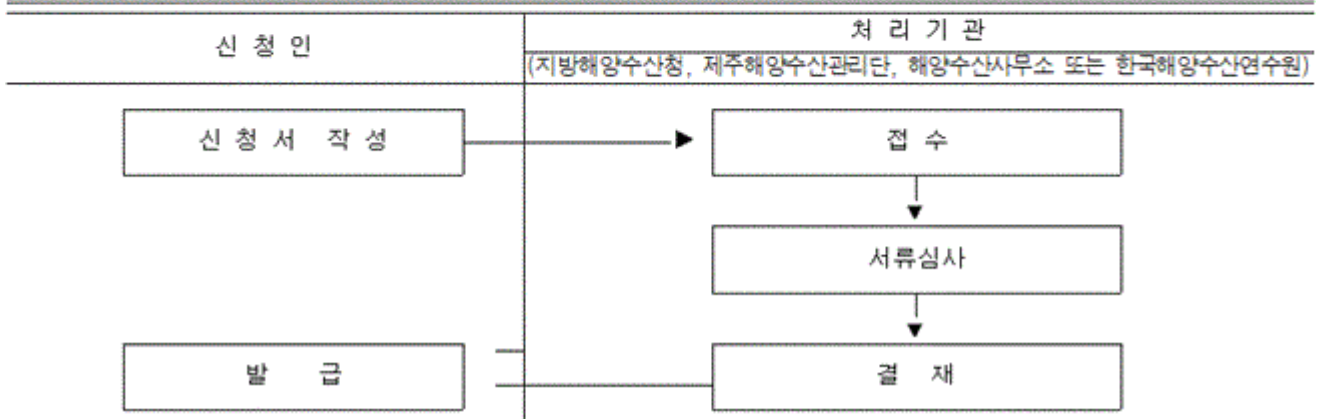
| | |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뒤쪽 참조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 | | | | | |
|------|---|---|-------------------------|---|---------|
| 첨부서류 | ①
(갑판·기관·운항)
당직부원 | 1. 선원수첩 또는 승무경력 증명서류
2. 당직부원교육 이수증명서(해당자만 제출합니다) | ②
(갑판·기관·운항)
유능부원 | 1. 승무경력 증명서류
2. 당직부원 자격증
3. 유능부원교육 이수증명서(해당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
| | ③
위험물적재
선박 승무 | 1. 선원수첩 또는 승무경력 증명서류
2. 탱커기초교육 이수증서 또는 탱커보수교육 이수증서(해당자만 제출합니다) | ④
가스연료추진
선박 승무 | 1. 승무경력 증명서류(해당자만 제출합니다)
2. 가스연료추진선박 기초교육 이수증서 또는 가스연료추진선박 직무교육 이수증서(해당자만 제출합니다)
3. 액화가스탱커 승무자격증 또는 기초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해당자만 제출합니다) | 1인당 2천원 |
| | ⑤
구명정 조종사·고속구조정 조종사 | 1.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2. 구명정 조종사 교육 이수증서 또는 고속구조정 조종사 교육 이수증서(해당자만 제출 합니다) | | | |
| | ⑥
선박조리사 | 선박조리사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⑦
의료관리자 | |
| | 공통 | 1.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 사진 또는 정보통신망에 이용되는 사진 이미지 파일). 다만, ①, ②, ③, ④ 신청의 경우에는 선원수첩 미소지자만 해당합니다.
※ 정보통신망으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첨부서류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 |
| 비고 | ① (갑판·기관·운항) 당직부원 자격증: 「선원법 시행규칙」 제41조
② (갑판·기관·운항) 유능부원 자격증: 「선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③ 위험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 「선원법 시행규칙」 제42조
④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 「선원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⑤ 구명정 조종사·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증: 「선원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제43조의2
⑥ 선박조리사 자격증: 「선원법 시행규칙」 제47조의5
⑦ 의료관리자 자격증: 「선원법 시행규칙」 제51조 | | | | |

처리절차



[별지 제19호서식] 삭제 <2005.10.17>

■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3. 7. 14.>

| | | |
|---|--|----------------------------|
| 자격증번호 :
(CERTIFICATE NO.) | | 사진
가로 3.5cm
세로 4.5cm |
| 구명정 조종사 자격증
CERTIFICATE OF PROFICIENCY IN SURVIVAL CRAFT AND RESCUE BOATS OTHER THAN FAST RESCUE BOATS | | |
| 성명 _____
(NAME) | 생년월일 _____
(DATE OF BIRTH) | |
| 위 사람은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로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및 「선원법」 제 64조에 따라 구명정 조종사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 | |
|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Regulation VI/2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as amended, and the article 64 of Seafarers Act, it is certified that the above mentioned person is qualified in survival craft and rescue boats other than fast rescue boats. | | |
| 발급일시
(ISSUED ON) | 이 승무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까지 연장함.
The Validity of this endorsement is hereby extended until
갱신일(Date of revalidation) | |
| 유효기간 만료일
(Date of Expiry) | 관인 (Stamp) | |
| 발급기관
(ISSUED BY) | 이 승무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까지 연장함.
The Validity of this endorsement is hereby extended until
갱신일(Date of revalidation) | |
| | 관인 (Stamp) | |
| 대 한 민 국
_____ 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해양수산사무소장 | | 직인 |
| SIGNED _____
DIRECTOR GENERAL
_____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JEJU OCEANS AND FISHERIES MANAGEMENT OFFICE or DISTRICT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THE REPUBLIC OF KOREA | | |

■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개정 2023. 7. 14.>

| | | | |
|--|--|---|--|
| 자격증번호 :
(CERTIFICATE NO.) | | 사진
가로 3.5cm
세로 4.5cm | |
| <div style="text-align: center;"> 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증
 CERTIFICATE OF PROFICIENCY IN FAST RESCUE BOATS </div> | | | |
| 성명 _____
(NAME) | | 생년월일 _____
(DATE OF BIRTH) | |
| 위 사람은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로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및 「선원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 따라 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Regulation VI/2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as amended, and the article 43-2 of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Seafarers' Act, it is certified that the above mentioned person is qualified in fast rescue boats. | | | |
| 발급일시
(ISSUED ON) | | 이 승무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까지 연장함.
The Validity of this endorsement is hereby extended until
갱신일(Date of revalidation) | |
| 유효기간 만료일
(Date of Expiry) | | 관인(Stamp) | |
| 발급기관
(ISSUED BY) | | 이 승무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까지 연장함.
The Validity of this endorsement is hereby extended until
갱신일(Date of revalidation) | |
| | | 관인(Stamp) | |
| 대 한 민 국
_____ 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해양수산사무소장 | | <div style="border: 2px solid orange;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color: red; font-weight: bold;"> 직인 </div> | |
| SIGNED _____
DIRECTOR GENERAL
_____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JEJU OCEANS AND FISHERIES MANAGEMENT OFFICE or DISTRICT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THE REPUBLIC OF KOREA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7. 7. 19.>

| | | | | | | | | |
|--|--|----------------------------|---------------------------|--|----------------------------|---------------------------|--|----------------------------|
| 증서번호
(CERTIFICATE NO.) | | | | | | | | |
| 승 무 정 원 증 서
SAFE MANNING DOCUMENT | | | | | | | | |
| 선박명
(NAME OF SHIP) | 선박부호
(OFFICIAL NO.) | IMO번호
(IMO NO.) | 선적항
(PORT OF REGISTRY) | 선종
(TYPE OF VESSEL) | 항행구역
(TRADING AREA) | 총톤수
(GROSS TONNAGE) | 주기관출력
(MAIN ENGINE POWER(KW)) | |
| | | | | | | (IT :) | | |
| 승무정원(계 : 명)
SHIP'S COMPLEMENT(TOTAL : PERSONS) | | | | | | | | |
| 등급/직무
(GRADE/CAPACITY) | 면허증
(CERTIFICATE ; STCW REGULATION) | 인원수
(NUMBER OF PERSONS) | 등급/직무
(GRADE/CAPACITY) | 면허증
(CERTIFICATE ; STCW REGULATION) | 인원수
(NUMBER OF PERSONS) | 등급/직무
(GRADE/CAPACITY) | 면허증
(CERTIFICATE ; STCW REGULATION) | 인원수
(NUMBER OF PERSON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eriodically unattended machinery space yes/no | | | | | | | | |
| (관청기사란 OFFICIAL REMARKS)
1. 부가적 자격을 요하는 인원 : 총 명
THE NUMBER OF PERSONNEL REQUIRED OF ADDITIONAL QUALIFICATIONS :
TOTAL PERSONS
○의료관리자 : 명(PERSON IN CHARGE OF MEDICAL CARE : PERSONS)
○응급처치담당자 : 명(PERSON IN CHARGE OF MEDICAL FIRST AID : PERSONS)
○위험물적재선박 승무자격자 : 선박직원 명, 부원 명
(QUALIFIED PERSONS ON SHIPS CARRYING HAZARDOUS CARGOES :
SHIP-OFFICERS PERSONS, RATING PERSONS)
○구명정 조종사(고속구조정 조종사)자격자 : 명
(PROFICIENT PERSONS IN SURVIVAL CRAFT AND RESCUE BOAT : PERSONS)
○여객안전관리선원 : 명
(PERSON IN CHARGE OF PASSENGERS' SAFETY : PERSONS)
2. 비고(REMARKS) : | | | | | | | | |
| 「선원법」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무정원 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Safe Manning Document is issued under the provision of Article 65 and 66 in Seafarers Act.
발급일시 :
(DATE OF ISSUE)
발급기관 :
(ISSUED BY) | | | | | | | | |
| 대 한 민 국
_____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해양수산사무소장
SIGNED _____ | | | | | | | | |
| DIRECTOR GENERAL
_____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JEJU OCEANS AND FISHERIES MANAGEMENT
OFFICE or DISTRICT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22호의2서식] <개정 2017. 7. 19.>

| | | | | | |
|---|----------------|------------------------|--------------------|--------|------|
| 승무정원완화허가신청서 | | | | | 처리기간 |
| | | | | | 2 일 |
|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명칭 | | | | |
| | ② 성명 (대표자) | | ③ 생년월일 (성별) | | |
| | ④ 주 소 | | | | |
| ⑤ 선 명 | ⑥ 선 종 | ⑦ 선박의 크기
(총톤수 및 KW) | ⑧ 항행구역 | ⑨ 무선설비 | |
| | | | | | |
| ⑩ 완 화 신 청 내 용 | | 자격별 최소 승무원인원 | 허가받고자 하는 자격별 승무원인원 | | |
| | | | | | |
| ⑪ 신 청 사 유 | | | | | |
| 「선원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승무정원완화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 | |
|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2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신청인
(전화번호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인) 또는 서명
(</div> </div> <div style="margin-top: 20px;"> 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귀하
 해양수산사무소장 </div> | | | | | |
| 구
비
서
류 | 1. 선원명부 | | | | 수수료 |
| | 2. 취업규칙 등 증빙서류 | | | | 없 음 |

53337-35211민

190mm×268mm

91.1.31 승인

(신문용지 54g/m²)

■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3서식] <개정 2014.9.19.>

응시원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시험구분
(년도 회) | | 정기·임시
필기··실기 | |
| 응시자격 | [] 선박조리사 [] 의료관리자 | | | | |
| 성명 | 생년월일 | | 사진
(3.5cm×4.5cm) | | |
| 주소 | | | | | |
| 학력 | 20 . . .부터 20 . . .까지(월) | | | | |
| | 실습기간 : 해상 월, 육상 월 | | | | |
| | 학교 과(졸업, 졸업예정, 수료) | | | | |
| 소지면허증 | 해기사 | 명 칭 | | 교부일 | |
| | | 한정면허 | | | |
| | 기 타 | 명 칭 | | 교부일 | |

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사항이 거짓으로 판명된 때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서약하고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 | |
|------------------|-------------------------------------|---|
| ※응시번호 | 응시자
(전화번호) | 인 |
|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귀하 | | |

| |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의료관리자
자격시험: 5천원 |
| 기재요령 | "※"표시한 곳은 적지 마십시오. |

----- 자르는 선 (간인) -----

| | | | |
|--------|---------------------------------------|-----------------|---------------------|
| ※응시번호 | 응시표
(년도 []선박조리사/[]의료관리자) | | 사진
(3.5cm×4.5cm) |
| 성 명 | 생년월일 | | |
| 소지면허 | 시험구분 | []필기 []면접 | |
| | | | |

20 년 월 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 120g/㎡]

■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신설 2014.9.19.>

자격증번호 :
(CERTIFICATE NO.)

사 진
가로 3.5cm
세로 4.5cm

선 박 조 리 사 자 격 증 CERTIFICATE OF SHIPS' COOK

성명 _____
(NAME)

생년월일 _____
(DATE OF BIRTH)

위 사람은 「2006 해사노동협약」 제3.2조제3항 및 「선원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선박조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Under the provisions of Regulation 3.2(3) of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and article 76(2) of the Seafarers' Act, it is certified that the above mentioned person is qualified as a Ships' Cook.

발급일시:
(DATE OF ISSUE)

발급기관: 「선원법」 제158조에 따라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직인

(ISSUED BY)

SIGNED _____

PRESIDENT OF THE KOREA INSTITUTE OF MARITIME AND FISHERIES TECHNOLOGY, AUTHORIZED BY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8 OF THE SEAFARERS' ACT.

210mm×297mm[백상지 120g/㎡]

■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서식] <개정 2016.1.13.>

| 건강진단서
CERTIFICATE OF MEDICAL EXAMINATION | | | | |
|---|---|---|----------------------------|----------------|
| (Applicants) | 성명(Name) | | 성별(Sex) | |
| | 생년월일(Date of Birth) | | 국적(Nationality) | |
| (Results) | 신장(Height) | cm | 혈압(Blood Pressure) | |
| | 체중(Weight) | kg | 혈액형(Blood Type) | |
| | 청력(Hearing) | 좌LT :
우RT : | 시력(Visual acuity) | 좌LT :
우RT : |
| | 색각(Colour Vision) | | 흉위(Circumference of Chest) | cm |
| | 혈액/조혈계(Blood disorders) | | 감염병(Infections) | |
| | 정신계(Mental disorders) | | 피부질환(Skin disorders) | |
| | 순환계(Cardiovascular system) | | 신경계(Nervous system) | |
| | 생식 및 비뇨계(Genito-urinary conditions) | | 소화계(Digestive system) | |
| | 당뇨(Diabetes) | | 간장(Liver) | |
| | 호흡계 및 흉부X선검사
(Respiratory disorders & Chest-X Ray) | | | |
| 특수건강진단에 한함
(Special Examination Only) | 빈혈(Anemia) | | | |
| | 소변 및 매독(Urine and Syphilis) | | | |
| (Declaration of the recognized medical practitioner) | 검사 시 피검사자 신분 확인 여부(Confirmation that identification documents were checked at the point of examination) | | []예(Yes)[]아니오(No) | |
| | 청력 충족 여부(Hearing meets the standards in the section A-1/9?) | | []예(Yes)[]아니오(No) | |
| | 보조기 미착용시 청력 충족 여부(Unaided Hearing satisfactory?) | | []예(Yes)[]아니오(No) | |
| | 시력 충족 여부(Visual acuity meets the standards in the section A-1/9?) | | []예(Yes)[]아니오(No) | |
| | 색각 충족 여부(Colour Vision meets the standards in the section A-1/9?) | | []예(Yes)[]아니오(No) | |
| | 최근 색각검사일(Date of last colour vision test) 년 월 일 | | | |
| | 경계업무 적합성(Fit for lookout duties) | | []예(Yes)[]아니오(No) | |
| | 건강에 제한이나 제약사항이 있는가?(Any limitations or restrictions on fitness?) | | []예(Yes)[]아니오(No) | |
| | 제한이나 제약사항 기술(If "Yes", specify limitations or restrictions) | | | |
| 선원이 승선이후 승무가 부적합하게 되거나 타인의 건강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는 증상이 있는가?(Is the seafarer suffering from any medical condition likely to be aggravated by service at sea or to render the seafarer unfit for such service or to endanger the health of other persons on board?) | | []예(Yes)[]아니오(No) | | |
| 건강진단 실시일(Date of Exam) | | 년 월 일 | | |
| 유효기간만료일(Date of Expiry) | | 년 월 일 | | |
| 선원의 서명
(Seafarer's signature) | | 검사 의사명 및 서명
(Name and Signature of Examinee) | | |
| 본인은 이 진단서의 내용과 STCW 협약 A-1/9조 제6항에 따라 진단서 내용에 대하여 재검토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I have been informed the content of the certificate and of the right to review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6 of section A-1/9 of the STCW Code) | | | | |
| 「선원법 시행규칙」 제54조의2에 따라 STCW 협약과 해사노동협약의 관계 기준을 충족하였기에 이 건강진단서를 발급합니다.(It is issued, under the article 54-2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Seafarers' Act, to meet the requirements of both the 1978 STCW Convention as amended and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 | | | |
| 발급일(Date of Issue) : 년 월 일 | | | | |
| 발급 의료기관명(Official name of issuing Authority) | | 직인(Stamp) | | |
| (전화번호) | | | | |

210mm×297mm(백상지 30g/㎡)

[별지 제24호 서식] <개정 2023. 7. 14.>

| | |
|---|--------------------------------------|
| <p>자격증번호 :
(CERTIFICATE NO.)</p> <p>의 료 관 리 자 자 격 증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TO PROVIDE MEDICAL CARE</p> | <p>사 진
가로 3.5cm
세로 4.5cm</p> |
| <p>성명 _____ 생년월일 _____
(NAME) (DATE OF BIRTH)</p> | |
| <p>위 사람은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로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및 「선원법」 제85조에 따라 의료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p> <p>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Regulation VI/4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as amended, and the article 85 of Seafarers Act, it is certified that the above mentioned person is qualified to provide medical care on board.</p> | |
| <p>발급일시:
(DATE OF ISSUE)</p> | |
| <p>발급기관: 「선원법」 제158조에 따라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ISSUED BY)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인]</p> <p>SIGNED _____</p> | |
| <p>PRESIDENT OF THE KOREA INSTITUTE OF MARITIME AND FISHERIES TECHNOLOGY, AUTHORIZED BY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8 OF THE SEAFARERS ACT.</p> | |

148mm×210mm

(인쇄용지<특급> 120g/m²)

표 준 의 료 보 고 서

Standards Medical Report Form

| | | | | | |
|--|---|--|--|-------------------------------------|--|
| <p>선내 선원의 상병 발생시, 의료관리자나 선장, 그리고 육상의 병원 및 의료진에 의해서 작성되어야 하며,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p> <p>For completion by a person in charge of medical care or master, and hospital or doctor ashore, in case of illness or injury affecting seafarers and this form should be kept confidential.</p> | <p>주의. 이 표준의료보고서의 원본은 선내 보관하고, 선장(또는 그 대리인), 육상 병원 의료진 등에는 이 표준의료보고서의 사본을 제출 할 수 있다.</p> <p>Note, Copies of this form should be provided for the seafarer's medical records, ship's Master (or his representatives), and hospital/doctor ashore.</p> | | | | |
| <p>선장 또는 의료관리자 작성 사항</p> <p>For completion by ship's master or a person in charge of medical care</p> | <p>일자 Date :</p> | | | | |
| <p>환자성명 Surname of patient, other name :</p> | | | | | |
| <p>생년월일 Date of birth :</p> | <p>선명 Name of ship :</p> | | | | |
| <p>국적 Nationality:</p> | <p>선주 Shipowner :</p> | | | | |
| <p>선원수첩번호 Seafarer's Book number :</p> | <p>직책 Shipboard position held :</p> | | | | |
| <p>선박대리인 또는 대리점</p> <p>Name of ship's representative / Agent on shore :</p> | <p>선박대리인, 대리점 주소 및 연락처</p> <p>Address and telephone number of ship's representative on shore :</p> | | | | |
| <p>환자의 질병, 손상정도 및 선박에서의 치료사항 (필요시 밀봉)</p> <p>Details of illness or injury. Treatment received on board ship (enclose attachments if) :</p> | | | | | |
| <p>질병발생일 Date of onset of illness :</p> | <p>상병발생일 Date injury occurred :</p> | | | | |
| <p>직무수행 불능기간 Date of ceased work on board :</p>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70%;">의료관리자 서명 Signature of a person in charge of medical care</td> <td style="width: 30%;"></td> </tr> <tr> <td>선장 서명
Signature of ship's master</td> <td></td> </tr> </table> | 의료관리자 서명 Signature of a person in charge of medical care | | 선장 서명
Signature of ship's master | |
| 의료관리자 서명 Signature of a person in charge of medical care | | | | | |
| 선장 서명
Signature of ship's master | | | | | |

(제2쪽 중 2쪽)

| | | | |
|--|---|-------------------------------------|---|
| 육상 의료진 작성사항
For completion by hospital or examining doctor on shore | | | |
| 진단명 Diagnosis : | | | |
| 환자검사일 Date when patient first examined : | | | |
| 검사 세부사항 Details of specialized examinations : | | | |
| 투약 및 처치 (상품명의 약, 조제, 일반적 처치 기록) Treatment given (generic names of drugs, dosage, route of administration) : | | | |
| 이후 선박에서의 치료 요구사항 Further treatment to be given on board ship | | | |
| 선박에서의 주의사항 Precaution to be taken on board ship : | | | |
| 진료의료진의 기타 관찰 사항 Other observation of hospital or examining doctor : | | | |
| 추가 의료진료 필요유무
Should see another doctor? | yes
[] | no
[] | 필요한 진료과목, 날짜 When? Specify speciality, if necessary: |
| 전염성 질환 유무
Is the illness contagious or infectious? | [] | [] | 질병의 치유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Estimated duration of illness : |
| 근무가능 유무
Fit for normal work now | [] | [] | |
| 근무 가능한 일
Fit for normal work from | _____ (날짜지정) (indicate date) | | |
| 근무 조정 필요 유무
Fit for restricted work | [] | [] | 구체적으로 Specify : |
| 근무 불가 유무
Unfit for work | [] | [] | 필요한 일수? For how many days? |
| 요양 필요 유무
Bed rest necessary | [] | [] | 필요한 일수? For how many days? |
| 추가 사항 Recommended to be
송환 필요 유무 repatriated
인원 치료 필요 hospitalized | 항공기 송환 YES NO
Air transport recommended? | | 동반 필요 유무 YES NO
Should be accompanied? |
| 의사 성명 (대문자 기록 또는 스탬프 명시),
담당, 주소, 전화번호
Name of doctor (in capital letters, written or stamped), position held, address, telephone number | | | |
| 장소 및 일자 Place and date : | | 의료진 서명
Signature of doctor | |
| | | 선장 서명
Signature of ship's master | |

양육책임 이행 관련 심의 청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알록)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4개월 |
| 재해보상 선택 [] 유족보상 [] 행방불명보상 | | | |
| 재해
선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재해발생 연월일 | 사망연월일(또는 행방불명연월일) | |
| 선원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 | 성명 | 생년월일 | |
| | 선원과의
관계 | 해당 선원의 () | |
| 청구인
(선박소유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 주소(소재지) | | |
| | 연락처 | 전화번호 | |
| | | 전자우편주소 | |
| 선박
정보 | 선박명 | | 선박톤수 |
| | 선박소유자 | | 업종 |
| | 선원수 | 한국인 선원(명), 외국인 선원(명) | |
| | 재해보험사업자 | | |
| 청구
이유 | ※ 해당 선원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 및 정도 등을 「선원법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

「선원법」 제103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선원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 이행과 관련한 심의를 청구합니다.

[illegible]

청구인(선박소유자)

(서명 또는 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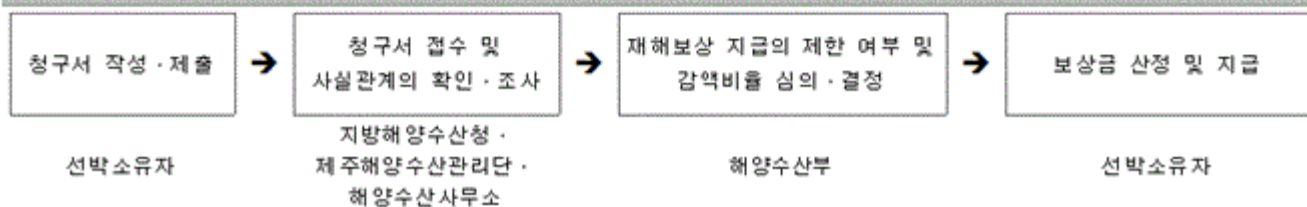
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해양수산사무소장

귀하

첨부
서류

1. 「선원법」 제103조의2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을 청구한 자가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유족보상 또는 같은 법 제101조에 따른 행방불명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선원법」 제103조의2제1항에 따라 선원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의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



[illegible]

■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4서식] <개정 2024. 7. 24.>

| 교육이수증
(CERTIFICATE) | | 이수교육
(COURSE COMPLETED) | | |
|---|---|----------------------------|------------------|--------------------|
| 선원수첩번호
(SEAFARERS BOOK NO.) | <div style="text-align: center;"> <p>사진</p> <p>(3.5cm × 4.5cm)</p> </div> | 이수과정
(COURSE) | 교육기간
(PERIOD) | 유효기간
(VALIDITY) |
| 생년월일
(DATE OF BIRTH) | | | | |
| 성명
(NAME) | | | | |
| <p>위 사람은 「선원법」 제116조제3항에 따른
‘선원 노동권·인권 보호교육 과정’을 수료
하였기에 이를 증명합니다.</p> <p>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person has
successfully completed a course ‘Seafarer’s
Labor·Human Right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6 (3) of the Seafarers’ ACT</p> | | | | |
| <p>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위탁교육기관의 장직인</p> | | | | |
| <p>_____</p> | | | | |
| <p>PRESIDENT</p> | | | | |
| <p>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
or Recognized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e, entrusted from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p> | | | | |
| | | | | |
| | | | | |

「2006 해사노동협약」 해사노동적합선언서 - 제1부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 - Part I

(주의: 이 선언서는 해당 선박의 해사노동적합증서에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Note: This Declaration must be attached to the ship's Maritime Labour Certificate)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급됨.

Issu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006년 해사노동협약」(이하 "협약"이라 합니다)과 관련하여 아래의 선박은 협약 제A5.1.3조를 준수하여 유지되고 있습니다.

With respect to the provisions of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he Convention"), the following referenced ship:

| 선명 (Name of ship) | IMO번호 (IMO Number) | 총톤수 (Gross tonnage) |
|-------------------|--------------------|---------------------|
| | | |

is maintained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s A5.1.3 of the Convention.

아래 서명자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다음의 사항을 선언합니다.

- (가) 협약의 규정은 아래에 기술되어 있는 국내 요건들에 완전히 수용되어 있습니다.
- (나) 이러한 국내 요건들은 아래의 인용된 국내 규정들에 포함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규정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 (다) 대한민국 정부는 협약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실질적 동등사항을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 (라) 협약 제3장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면제사항은 아래에 해당 목적을 위해 규정되어 있는 부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마) 선종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특별한 국내 규정은 없습니다.

The undersigned declares, on behalf of the above-mentioned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at:

- (a)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re fully embodied in the national requirements referred to below;
- (b) these national requirements are contained in the national provisions referenced below; explanations concerning the content of those provisions are provided where necessary;
- (c)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not adopted any substantial equivalencies under Article VI, paragraphs 3 and 4;
- (d) any exemptions grant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itle 3 of the Convention are clearly indicated in the section provided for this purpose below; and
- (e) there are no ship-type specific requirements under national legislation.

| | | |
|---|--|--|
| 1 | <p>선원의 최소연령
Minimum age
(Reg.1.1)</p> | <p>「선원법」 제61조(소년선원의 근로시간 등)
선박소유자는 18세 미만의 소년선원의 보호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시간, 휴식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p> <p>Article 61(Hours of work of Young Seafarers) of the Seafarers' Act
A shipowner shall observe the standards on hours of work, hours of rest, etc. prescribed by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for the protection of minor seafarers under 18 years of age.</p> <hr/> <p>「선원법」 제91조(사용제한)
선박소유자는 16세 미만인 사람을 선원으로 사용하지 못한다.</p> <p>Article 91(Restrictions on Employment) of the Seafarers' Act
A shipowner shall not appoint a person under 16 years of age as a seafarer.</p> <hr/> <p>「선원법」 제92조(야간작업의 금지)
선박소유자는 18세 미만의 선원을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를 포함하는 최소 9시간 동안은 작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다만, 가벼운 일로서 그 선원의 동의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Article 92(Prohibition of Night Work) of the Seafarers' Act
A shipowner shall not have a seafarer under 18 years of age engage in work for at least nine hours at night including hours from midnight to five in the morning; provided, however,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a shipowner has obtained the consent of such a seafarer and approval from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as easy work.</p> <hr/> <p>「선원법 시행규칙」 제56조(연소선원의 사용승인)
선박소유자가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연소선원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선원의 승선공인신청서에 해당선원이 18세에 달하는 연월일을 빨간색글씨로 기재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p> <p>Article 56(Employment Approval of Young seafarers)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eafarers' Act
A shipowner wishing to obtain employment approval of young seafarers pursuant to Article 91 (2) of the Act shall enter the date when the seafarer reaches 18 years of age in red on the boarding approval application and submit the application to the competent Regional Authorities of Oceans and Fisheries.</p> <hr/> <p>「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제8조(작업제한)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18세 미만의 선원에게 시켜서는 아니되는 작업은 다음의 작업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식성물질, 독물 또는 유해성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화물창 또는 탱크안의 청소작업 2. 유해성의 도로 또는 용제를 사용하는 작업 3. 직접 햇빛을 받으며 장시간하는 작업 4. 추운 장소에서 장시간하는 작업 5. 냉동고 안에서 장시간하는 작업 6. 수중에서 선체 또는 추진기를 검사·수리하는 작업 7. 선체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이 물에 잠긴 상태에서 탱크 또는 보일러의 내부에서 행하는 수리작업 8. 먼지 또는 분말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장시간하는 작업 9. 30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다루는 작업 10. 알파선·베타선·중성자선 기타 유해한 방사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작업 |
|---|--|--|

| | | |
|---|--|---|
| | | <p>Article 8(Restrictions on Work) of the Rules on Safety and Health for Seafarers</p> <p>Pursuant to Article 91(3) of the Act, the work which seafarers younger than 18 years of age shall not be engaged shall be as follow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Work in a cargo hold or tank to remove corrosive materials, toxic substances, or harmful materials; b. Work involving the use of harmful paint or solvent; c. Long-time work in direct sunlight; d. Long-time work in cold places; e. Long-time work in cold chamber; f. Work involving inspection or repair of hull or propeller under water; g. Repair work inside a tank or boiler in the state that part or most of hull is submerged; h. Long-time work in places where dust or powder is generated; i. Work involving handling objects of 30Kg or more; and j. Work with risk of exposure to alpha rays, beta rays, neutron rays or other harmful radiation. |
| 2 | <p>건강진단서
 Medical
 certification
 (Reg.1.2)</p> | <p>「선원법」 제87조(건강진단서)</p> <p>선박소유자는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의원의 의사가 승무에 적당하다는 것을 증명한 건강진단서를 가진 사람만을 선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p> <p>Article 87(Medical Certificate) of the Seafarers' Act</p> <p>A shipowner shall only allow those who have a medical certificate of health in which a medical institution equal to or higher than a hospital level under the Medical Service Act or a doctor of a clinic meeting the standards prescribed by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proves them fit duties to be in service onboard a ship as seafarers.</p> <p>「선원법 시행규칙」 제54조(건강진단의 유효기간)</p> <p>제53조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1년(색각검사에 대하여는 6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2년(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1년)으로 하되, 항해중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항해가 종료될 때(어선 외의 선박에 승선한 선원에 대한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이 항해 중 만료되고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 후 항해가 종료될 때까지 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 후 3개월)까지로 한다.</p> <p>Article 54(Period of Validity of Check-up)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eafarers' Act</p> <p>The period of validity of the general health check-up under Article 53(1) shall be 1 year (6 years for color vision examination) and 2 years for the special health check-up under paragraph 3 of the same Article(1 year for a person under 18 years of age); provided, however, that where the period of validity thereof expires on a voyage, the date when the voyage comes to an end(three months after the period of validity of health check-up expires where the period of validity of health check-up of seafarers who work onboard a ship other than fishing vessels expires on a voyage and where three months or longer are remained between the expiration date and the end of the voyage) shall be the expiration date thereof.</p> |
| 3 | <p>선원의 자격
 Qualifications
 of seafarers
 (Reg.1.3)</p> | <p>「선원법」 제63조(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p> <p>「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선원당직국제협약"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선박소유자는 선박 운항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p> |

Article 63(Duty of Shipowner for Safe Operation) of the Seafarers' Act

A shipowner who is subject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watch-keeping of Seafarers") shall carry out the matters under the following sub-paragraphs for the safety of ship operation.

「선원법 시행령」 제52조의2(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는 선박소유자는 법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박운항의 안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선원에게 선박안에서의 임무 및 선박의 특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것
2. 선장에게 선박안에서 필요한 근무지침서를 제공할 것
3. 선장에게 해상인명안전 및 해양환경보호와 관련된 국내외의 규정 등 자료를 제공할 것
4. 선원을 교체할 때에는 업무의 인계·인수에 소요되는 충분한 시간을 선원에게 줄 것

Article 52-2(Responsibility of Shipowner for Safe Operat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eafarers' Act

The shipowner subject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shall perform the matters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for safe operation of the ship pursuant to Article 63(1) of the Act:

- a. Conducting training in order to make a seafarer familiar with obligations on a ship and the characteristics of his/her ship;
- b. Furnishing a master with a manual of duty on a ship;
- c. Supplying a master with materials, including domestic and foreign regulations concerning safety of life at sea and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 d. Allowing sufficient time for seafarers to take over and accept duties in case of change of seafarers.

「선원법」 제64조(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갑판부나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
- ② 총톤수 500톤 이상으로 1일 항해시간이 16시간 이상인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 3명 이상을 갑판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화물적재선박[산적액체화물을 수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선박만 해당한다]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명정 조종사 자격증을 가진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Article 64(Manning of Qualified Seafarers in the Service of a Ship) of the Seafarers' Act

- (1) The shipowner of a ship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shall have seafarers, qualified as set out by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being in service onboard the ship as watch-keeping seafarers in the deck department or the engine department.
- (2) The shipowner of a ship of 500 gross tonnage or more of which the navigation hours are not less than 16 hours shall have not less than three seafarers, qualified under paragraph (1), being in service onboard the ship as watch-keeping seafarers of the deck department.
- (3) The shipowner of a ship carrying dangerous cargoes(only applicable to a ship carrying liquid cargoes in bulk)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shall have seafarers, qualified as set out by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being in service onboard the ship.

| | | |
|---|--|---|
| | | <p>(4) The shipowner of a ship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shall have a seafarer, with the certificate of proficiency in survival craft and rescue boats other than fast rescue boats as set out by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being in service onboard the ship.</p> <p>(5) The shipowner of a ship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shall have a seafarer, with qualification necessary for the safe management of passenger ships as set out by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being in service onboard the ship.</p> <p>「선원법」 제116조(선원의 교육훈련)
 선원과 선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p> <p>Article 116(Education and Training of Seafarers) of the Seafarers' Act
 A seafarer and a person who intends to be a seafarer shall receive education and training conducted by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a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p> <p>「선박직원법」 제11조(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
 ①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이하 "승무기준"이라 한다)에 맞는 해기사(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승무시켜야 한다.</p> <p>Article 11(Standards for Serving Aboard Ship and Duties of Ship's Personnel) of the Ship Personnel Act
 (1) A shipowner shall hire a marine officer(including a person who has obtained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 for serving aboard ship under Article 10-2;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Chapter), who meets the standards for serving aboard ship as one of ship's personnel(hereinafter referred to as "standards for serving aboard ship")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consideration of the ship's navigation area, size, and use, the generating power of a driving engine, and other elements concerning the safety of the ship's navigation.</p> |
| 4 | 선원근로계약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s
(Reg. 2.1) | <p>「선원법」 제27조(근로조건의 명시 등)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선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선원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선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선원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선원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Article 27(Clear Statement of Working Conditions) of the Seafarers' Act
 (1) Where a shipowner enters into a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he/she shall make wages, hours of work and other labour conditions specifically clear to a seafarer. The same shall also apply where he/she changes a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2) When a shipowner enters into a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with a seafarer, where the seafarer wishes, the shipowner shall provide opportunity that the seafarer may review the details of the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and be provided with advice and suggestions about the same. The same shall also apply where the shipowner changes a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p> <p>「선원법」 제32조(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등의 제한)
 ① 선박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 및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p> |

②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았을 때와 선박소유자가 제98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원이 직무상 부상의 치료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그 후 30일
2. 산전·산후의 여성선원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그 후 30일

Article 32(Restrictions on Cancellation of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of the Seafarers' Act

- (1) A shipowner shall neither cancel a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nor inflict the temporary retirement, the suspension from duty, the reduction of wages or other punishment on a seafarer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 (2) No shipowner shall cancel a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during any of the following periods; provided, however,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he/she is authorized by the Seafarer Labour Relations Commission and he/she a lump sum compensation under Article 98, as in cases where he/she is unable to continue to conduct his/her business due to a natural disaster or other unavoidable circumstances:
 - a. The period during which a seafarer is not engaged in his work for medical treatment of an injury or medical treatment of a disease due to his/her work, and 30 days thereafter; or
 - b. The period during which a female seafarer before and after childbirth is not engaged in her work pursuant to Article 74 of the Labour Standards Act, and 30 days thereafter.

「선원법」 제33조(선원근로계약 해지의 예고)

-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그 선원에게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소유자가 천재지변, 선박의 침몰·멸실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2. 선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선한 경우
 3. 선원이 제22조제3항에 따라 하선 징계를 받은 경우
- ② 선원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30일의 범위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한 예고기간을 두고 선박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Article 33(Advance Notice of Rescission of Seafarer employment contract) of the Seafarers' Act

- (1) Where a shipowner intends to cancel a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he/she shall inform a seafarer of the cancellation of the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in writing with a period of advance notice of not less than 30 days, and where he/she fails to inform the seafarer of such cancellation, he/she shall pay ordinary wages of not less than 30 days; provided, however,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a shipowner or seafarer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cases:
 - a. Where a shipowner is unable to continue to conduct his/her business due to a natural disaster, sinking or destruction of a ship or other unavoidable circumstances, and where recognition by the Seafarer Labour Relations Commission is obtained;
 - b. Where a seafarer leaves a ship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or
 - c. Where a seafarer is submitted to disciplinary measures of forced leave from the ship pursuant to Article 22 (3).
- (2) Where a seafarer intends to rescind a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he/she shall inform a shipowner of his/her intention with a period of advance notice of not less than 30 days as stipulated in a collective agreement, the rules of employment or the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선원법」 제35조(선원근로계약의 존속)

- ① 선원근로계약이 선박의 항해 중에 종료할 경우에는 그 계약은 선박이 다음 항구에 입항하여 그 항구에서 부릴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내릴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② 선박소유자는 승선·하선 교대에 적당하지 아니한 항구에서 선원근로계약이 종료할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승선·하선 교대에 적당한 항구에 도착하여 그 항구에서 부릴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내릴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원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있다.

Article 35(Continuance of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of the Seafarers' Act

- (1) Where a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is terminated while a ship is out at sea, such contract shall be deemed to continue until the ship enters the next port and unloads all cargoes to be unloaded or lands all passengers who are to leave the ship at the port.
- (2) Where a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is terminated at a port which is not fit for a shift of boarding and leaving a ship, a shipowner may continue the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until the ship arrives at a port fit for a shift of boarding and leaving the ship and unloads all cargoes to be unloaded and lands all passengers who are to leave the ship at the port within the extent of not exceeding 30 days.

「선원법」 제43조(선원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신고)

- ① 선원과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선원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선원에게 주어야 하며, 그 선원이 승선하기 전 또는 승선을 위하여 출국하기 전에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Article 43(Preparation and Reporting of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of the Seafarers' Act

- (1) A shipowner who has entered into a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with a seafarer shall prepare a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in duplicate in which matters prescribed by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re stated, and keep one copy thereof and give one copy thereof to the seafarer concerned, and report such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Oceans and Fisheries before the seafarer goes onboard or departs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work onboard.

「선원법」 제51조(승무경력증명서의 발급)

선박소유자나 선장은 선원으로부터 승무경력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요청을 받으면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Article 51(Issuance of Certificate of Seagoing Service) of the Seafarers' Act

Upon receipt of a request to issue a certificate of seagoing service by a seafarer, a shipowner or master shall immediately issue such certificate to the seafarer.

「선원법」 제151조(서류의 선박 내 게시 등)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박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적은 서류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박 내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제43조제1항에 따른 선원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된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서류

Article 151(Public Announcement of Rules of Employment) of the Seafarers' Act

- (1) A shipown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post the following documents in a conspicuous place inside of the ship,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a. Documents in which a collective agreement and the rules of employment are stated.

| | | |
|---|---|---|
| | | <p>(2) A shipown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keep the following documents in a ship:</p> <p>b. One copy of a seafarer labor contract prepared pursuant to Article 43 (1); and</p> <p>c. Documents in which the details of the labor standards and living standards of seafarers are stated in Korean and English, as prescribed by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p> <p>「선원법 시행령」 제16조(승무경력증명서의 발급)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승무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불리한 기호나 표시를 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p> <p>Article 16(Issuance of Certificate of Seagoing Service)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Seafarer's Act
In case of issuance of a certificate of seagoing service pursuant to Article 51 of the Act, a shipowner or a master shall enter only matters requested by an applicant and shall not leave a signal or a mark that may work against the applicant, or false information thereon.</p> <p>「선원법 시행규칙」 제20조(선원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원의 국적, 성명, 생년월일 및 출생지 2. 선박소유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선원근로계약이 체결된 장소 및 날짜 4. 선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 5. 임금에 관한 사항 6. 유급휴가 일수에 관한 사항 7. 선원근로계약의 종료에 관한 사항 8. 선박소유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건강보호 및 사회보장 등에 관한 사항 9. 선원의 송환비용에 관한 사항 10. 선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11. 단체협약에 관한 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p>Article 20(Matters to be Included in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eafarers' Ac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Seafarer's nationality, full name, date of birth and place of birth; b. Shipowner's name(in case of corporation, the name of its representative) and address (in case of corporation, the address of its head office); c. Place and date where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is made; d. Matters concerning seafarer's duty; e. Matters concerning seafarer's wage; f. Matters concerning the number of days of paid leave; g. Matters concerning termination of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h. Matters concerning protection of health and social security, etc., the expenses of which are borne by a shipowner; i. Matters concerning seafarer's repatriation expenses; j. Matters concerning seafarer's working condition; and k. Matters concerning a related collective agreement, where provisions about collective agreement are necessary. |
| 5 | <p>인증받은
선원직업소개소의
이용
Use of any
licensed or
certified or
regulated private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
(Reg.1.4)</p> | <p>「선원법」 제110조(선원공급사업의 금지)
구직·구인등록기관, 제112조제3항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외에는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다.</p> <p>Article 110(Prohibition of Seafarer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 of the Seafarers' Act
A person other than an institution for registration of job seeking and job offers, a seafarer management business operator under Article 112 (3), an organization or institution related to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prescribed by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not be engaged in recruiting or placing seafarers.</p> |

| | | |
|---|--|--|
| | | <p>「선원법」 제111조(금품 등의 수령 금지)
 선원을 고용하려는 자, 선원의 직업소개·모집·채용·관리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밖에 선원의 노무·인사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선원 또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그 직업소개·모집·채용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p> <p>Article 111(Prohibition of Receipt of Money and Other Valuables) of the Seafarers' Act
 A person who intends to employ a seafarer, a person engaged in job placement, recruitment, employment or management of seafarers or persons engaged in labour and personnel management business of seafarers shall not receive money or other valuables or other benefits, under any circumstances, from a seafarer or person who intends to become a seafarer in relation to job placement, recruitment, employment, etc.</p> <p>「선원법」 제113조(국제협약의 준수 등)
 ① 구직·구인등록기관, 선원관리사업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수산 관련 단체나 기관은 선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식으로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여야 하고, 선원의 직업소개와 관련하여 이 법, 「해운법」 및 해사노동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해사노동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가의 선원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선원을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사노동협약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해사노동협약의 기준을 충족하는 선원직업소개소로부터 소개받은 선원을 고용하여야 한다.</p> <p>Article 113(Observance, etc. of International Convention) of the Seafarers' Act
 (1) An institution for registration of job seeking and job offers, seafarer recruitment and placement agencies, or organizations or institutions related to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that conduct official business with permission from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operate seafarer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s by method of protecting and promoting the labour right to labour of seafarers, and observe matters prescribed by this Act, the Shipping Act and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in relation to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 of seafarers.
 (2) Where a shipowner intends to employ a seafarer through a seafarer recruitment and placement agency in a country to which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does not apply, he/she shall ascertain whether the seafarer recruitment and placement agency meets the standards of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and then shall employ a seafarer placed by a seafarer recruitment and placement agency that meets the standards prescribed by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as prescribed by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p> |
| 6 | <p>근로 또는 휴식 시간
 Hours of work or rest
 (Reg.2.3)</p> | <p>「선원법」 제60조(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①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으로 한다. 다만, 선박소유자와 선원 간에 합의하여 1주간 16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이하 "시간외근로"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해당직근무를 하는 선원에게 1주간에 16시간의 범위에서, 그 밖의 선원에게는 1주간에 4시간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로를 명할 수 있다.
 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원에게 임의의 24시간에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과 임의의 1주간에 77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임의의 24시간에 대한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은 한 차례만 분할할 수 있으며, 분할된 휴식시간 중 하나는 최소 6시간 이상 연속되어야 하고 연속적인 휴식시간 사이의 간격은 14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양항만관청은 입항·출항 빈도, 선원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직선원이나 단기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에 대하여 근로시간의 기준, 휴식시간의 분할과 부여간격에 관한 기준을 달리 정하는 단체협약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항만관장은 해당 단체협약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휴식시간의 완화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p> |

- ⑤ 제4항의 단체협약에는 제69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부여 간격보다 더 빈번하거나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일수보다 더 긴 기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⑥ 선박소유자는 인명, 선박 또는 화물의 안전을 도모하거나, 해양 오염 또는 해상보안을 확보하거나, 인명이나 다른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선원에게 시간외근로를 명하거나 제3항에 따른 휴식시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 ⑦ 선박소유자는 제6항에 따라 휴식시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작업을 한 선원 또는 휴식시간 중에 작업에 호출되어 정상적인 휴식을 취하지 못한 선원에게 작업시간에 상응한 보상휴식을 주어야 한다.
- ⑧ 선박소유자는 선박이 정박 중일 때에는 선원에게 1주간에 1일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

Article 60(Hours of Work and Hours of rest) of the Seafarers' Act

- (1) Hours of work shall be 8 hours a day and 40 hours a week; provided, however, that a shipowner and seafarers may extend hours of work by up to 16 hours a week(hereinafter referred to as "overtime work") by mutual agreement.
-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 shipowner may order a seafarer who keeps the navigational watch to work overtime within the extent of 16 hours a week, and other seafarers to work overtime within the extent of up to 4 hours a week.
- (3) Notwithstanding paragraphs (1) and (2), a shipowner shall provide seafarers with a minimum of 10 hours in any 24 hours and not less than 77 hours in any one week. In which cases, he/she may split the hours of rest not less than 10 hours in any 24 hours only once, and one of the split times to rest shall continue not less than 6 hours and the interval between consecutive periods of rest not exceed 14 hours.
- (4) Notwithstanding paragraphs (2) and (3), where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Oceans and Fisheries deem it unavoidable in consideration of the frequency of entry into and departure from a port, characteristics of duties of seafarers, etc., it may approve a collective agreement that defines standards of hours of work, and standards for division of the hours of rest and the interval thereof provided for a watch-keeping seafarer or a seafarer who is in service onboard a ship on short voyages. In such cases, the administrator of a Regional oceans and Fisheries Administration shall approve a collective agreement that meets standards for relaxation of the hours of rest prescribed by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5) A collective agreement under paragraph (4) shall include contents that grant paid leave more frequent than the interval of paid leave granted under Article 69 (1) or longer than the number of days of paid leave under Article 70 (1).
- (6) Where there are compelling reasons, such as seeking the safety of human life, a ship or cargoes, emergencies due to marine pollution or to secure maritime safety, or to rescue human life or other ships, a shipowner may order seafarers to work overtime in excess of hours of work under paragraphs (1) and (2) or do necessary work despite the hours of rest under paragraph (3).
- (7) A shipowner shall provide an adequate period of rest in compensation for and corresponding to hours of work to a seafarer who did necessary work despite being during rest time or a seafarer who did not take the normal rest because he/she was called out to work during the hours of rest pursuant to paragraph (6).
- (8) A shipowner shall provide seafarers with holidays not less than one day a week when a ship is at anchor.

「선원법」 제61조(소년선원의 근로시간 등)

선박소유자는 18세 미만의 소년선원의 보호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시간, 휴식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

Article 61(Hours of work of Young Seafarers) of the Seafarers' Act

A shipowner shall observe the standards on hours of work, hours of rest, etc. prescribed by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for the protection of minor seafarers under 18 years of age.

| | | |
|---|---|--|
| | | <p>「선원법 시행규칙」 제39조의6(소년선원의 근로시간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8세 미만인 소년선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18세 미만인 소년선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휴식시간을 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1일 1시간 이상의 식사를 위한 휴식시간 나. 매 2시간 연속 근로 후 즉시 15분 이상의 휴식시간 <p>Article 39-6(Hours work of Young Seafarers, etc.)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eafarers' Ac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Hours of work of young seafarers aged less than 18 years shall not exceed eight hours a day, 40 hours a week; b. Young seafarers aged less than 18 years shall be offered each of the following ite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Meals break for at least one hour a day; (b) More than 15 minute break immediately after two consecutive hours of work. <p>「선원법 시행규칙」 제40조(근로시간 등의 기록 서류)</p> <p>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선원의 1일 근로시간, 휴식시간 및 시간외근로를 기록할 서류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p> <p>Article 40(Documents of Hours of Work, etc.)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eafarers' Act</p> <p>Documents where daily hours of work, hours of rest and overtime work of seafarers are to be entered shall be on Attached Form No. 18.</p> |
| 7 | 선박에 대한 승무기준
Manning levels for the ship
(Reg.2.7) | <p>「선원법」 제65조(승무정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선박소유자는 제60조, 제64조 및 제76조를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선원의 정원[이하 "승무정원"(乘務定員)이라 한다]을 정하여 해양항만관청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선박의 승무정원을 인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무정원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운항 중인 선박에는 항상 승무정원 증서에 적힌 수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하며,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인원을 채워야 한다. 다만, 해당 선박이 외국 항에 있는 등 지체 없이 인원을 채우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Article 65(Complement) of the Seafarers' Ac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A shipowner shall determine the number of necessary seafarers(hereinafter referred to as "complement") to satisfy Article 60, Article 64 and Article 76 and obtain approval therefor fro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Oceans and Fisheries. (2) Wh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Oceans and Fisheries approve the complement of a ship pursuant to paragraph (1), it shall issue a safe manning document, as prescribed by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3) A shipowner shall always have the number of seafarers stated in a safe manning document being in service onboard a ship, and if a vacancy occurs, he/she shall fill the vacancy without delay; provided, however,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he/she obtains permission from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as deemed impractical to fill a vacancy, such as the relevant ship is in a foreign port, etc. |
| 8 | 거주설비
Accommodation
(Reg.3.1) | <p>「선박안전법」 제26조(선박시설의 기준)</p> <p>선박시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 2015년 1월 9일 이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에 대하여 2011년 1월 11일 이후에 개정된 선박설비기준(해양수산부고시)을 적용하며, 2015년 1월 9일 이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에 대하여는 2011년 1월 11일 개정 전의 선박설비기준(해양수산부고시)을 적용한다.</p> |

| | | |
|----|--|--|
| | | <p>Article 26(Standards of Ship's Facilities) of the Ship Safety Act
The ship's facilities shall be suitable for the Marine Notice on Ship Facilities Standards prescribed and announced by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p> <p>※ The Marine Notice on Ship Facilities Standards revised on or after 11 January 2011 applies only to new ships constructed or at a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on or after 9 January 2015, while the Marine Notice on Ship Facilities Standards revised before 11 January 2011 applies only to existing ships or new ships constructed or at a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before 9 January 2015.</p> <p>「선원법 시행규칙」 제9조(선내순시 및 점검)
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선원 거주설비의 위생 및 수리 상태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p> <p>Article 9(Inspection and Check on Ship)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eafarers' Act
A master or a person designated by a master shall inspect the State of hygiene and maintenance of crew accommodation not less than once a month and keep and manage the record thereof.</p> |
| 9 | 선내 오락시설
On-board recreational facilities
(Reg.3.1) | <p>「선박안전법」 제26조(선박시설의 기준)
선박시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 2015년 1월 9일 이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에 대하여 2011년 1월 11일 이후에 개정된 선박설비기준(해양수산부고시)을 적용하며, 2015년 1월 9일 이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에 대하여는 2011년 1월 11일 개정 전의 선박설비기준(해양수산부고시)을 적용한다.</p> <p>Article 26(Standards of Ship's Facilities) of the Ship Safety Act
The ship's facilities shall be suitable for the Marine Notice on Ship Facilities Standards prescribed and announced by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p> <p>※ The Marine Notice on Ship Facilities Standards revised on or after 11 January 2011 applies only to new ships constructed or at a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on or after 9 January 2015, while the Marine Notice on Ship Facilities Standards revised before 11 January 2011 applies only to existing ships or new ships constructed or at a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before 9 January 2015.</p> <p>「선원법 시행규칙」 제9조(선내순시 및 점검)
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선원 거주설비의 위생 및 수리 상태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p> <p>Article 9(Inspection and Check on Ship)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eafarers' Act
A master or a person designated by a master shall inspect the State of hygiene and maintenance of crew accommodation not less than once a month and keep and manage the record thereof.</p> |
| 10 | 식량 및 조달
Food and catering
(Reg.3.2) | <p>「선원법」 제76조(선내 급식)</p> <p>①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당한 양과 질의 식료품과 물을 선박에 공급하고, 조리과 급식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선내급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무 중인 선원의 다양한 문화와 종교적 배경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선내 급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선박조리사(이하 "선박조리사"라 한다)를 선박에 승무시켜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하거나 선박조리사를 갈음하여 선상 조리과 급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승무하게 할 수 있다.</p> |

Article 76(Providing Meals on Ship) of the Seafarers' Act

- (1) A shipowner shall supply seafarers who are in service onboard a ship with food and water of proper quantity and quality, as prescribed by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provide equipment necessary for cooking and providing meals, and provide meals on the ship. In such cases, he/she shall consider various cultural and religious backgrounds of seafarers who are in service onboard a ship.
- (2) A shipowner shall have a cook on a ship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ok on a ship") who has qualifica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ork on board to provide meals in a ship under paragraph (1); Provided, That a ship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may be exempted herefrom, or a shipowner may have a person who has knowledge of and experience in cooking and providing meals on a ship work on board in lieu of a cook on a ship.

「선원법」 제77조(선내 급식비)

- ①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76조제1항에 따른 식료품 공급을 갈음하여 선내 급식을 위한 식료품의 구입비용(이하 "선내 급식비"라 한다)을 선장에게 지급하고, 선장에게 선내 급식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장은 선원 모두에게 차별 없이 선내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선박소유자는 선내 급식비를 지급할 때에는 선원 1인당 1일 기준액을 밝혀야 한다.
- ③ 선내 급식비는 선내 급식을 위한 식료품 구입과 운반을 위한 비용 외의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내 급식비의 최저기준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최저기준액 이상의 선내 급식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Article 77(Cost for Providing Meals) of the Seafarers' Act

- (1) In lieu of supply of foodstuffs under Article 76 (1), a shipowner may disburse expenses incurred in purchase of foodstuffs to provide meals on a ship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sts for providing meals on a ship") to the captain and have him/her manage the provision of meals on a ship with approval therefor from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In such cases, the captain shall manage so that meals are provided to all seafarers on the ship without discrimination.
- (2) When a ship owner disburses costs for providing meals on a ship, he/she shall disclose a daily standard amount per seafarer.
- (3) Costs for providing meals on a ship shall not be disbursed for uses other than expenses for purchase and transport of foodstuffs to provide meals on the ship.
- (4)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fix the minimum standard amount of costs for providing meals on a ship, a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a shipowner shall disburse costs for providing meals on a ship more than the minimum standard amount.

「선원법 시행령」 제22조의2(선박조리사 의무승무 대상 선박의 예외)

법 제7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항해선이 아닌 선박
2.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승무정원이 10명 미만인 선박
3. 어선

Article 22-2(Exemption of Mandatory Manning of a Ship's Cook)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eafarers' Act

The term "a ship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of Article 76 (2)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 a. A ship that is not a seagoing ship;
- b. A ship the complement of which, under Article 65 (1) of the Act, is less than 10; or
- c. A fishing vessel

| | | |
|----|--|--|
| | | <p>「선원법 시행규칙」 제47조(선내급식)
선박소유자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적당한 양과 질의 선내급식을 위하여 선박마다 선장과 조리책임자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급식위원회를 두어 선원의 식생활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p> <p>Article 47(Providing Meals on Ship)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eafarers' Act
A shipowner shall establish the Meals Provision Committee comprising more than five committee members including a master and a ship's cook in charge of meals on each ship to ensure the proper amount and quality of meals onboard pursuant to Article 76 (1) of the Act and manage dietary conditions of seafarers; provided.</p> |
| 11 | 건강, 안전 및 사고방지
Health and safety and accident prevention
(Reg. 4.3) | <p>「선원법」 제79조(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①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이하 "선내안전보건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원의 안전·건강 관련 교육훈련 및 위험성 평가 정책
2. 선원의 직무상 사고·상해 및 질병(이하 "직무상 사고등"이라 한다)의 예방 조치
3. 선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선내 프로그램
4. 선내 안전저해요인의 검사·보고와 시정
5. 선내 직무상 사고등의 조사 및 보고
6. 선장과 선내 안전·건강담당자의 직무
7. 선내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8.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p> <p>Article 79(Standards for Safety and Hygiene and Prevention of Accidents on Ships) of the Seafarers' Act
(1) The following matters shall be included in the standards for safety and hygiene and prevention of accidents in a ship (hereinafter referred to as "standards for safety and hygiene in a ship") under Article 78 (1) 2:
a. Policies on the evaluat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and the dangerousness related to the safety and health of seafarers;
b. Measures for the prevention of an official accident, injury and disease (herein after referred to as "official accident, etc.") of seafarers;
c. Programs in a ship to promote the safety and the protection of health of seafarers;
d. Inspections, reports and corrections of main causes to hinder the safety in a ship;
e. Inspections and reports of an official accident, etc. in a ship;
f. Duties of the captain and a person in charge of the safety and health in a ship;
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committee on the safety in a ship;
h. Other matt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p> <p>「선원법」 제82조(선박소유자 등의 의무)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보호장구와 방호장치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방호장치가 없는 기계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한 선내 작업에는 일정한 경험이나 기능을 가진 선원을 종사시켜야 한다.
④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직무상 사고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양항만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p> <p>Article 82(Responsibility of Shipowners etc.) of the Seafarers' Act
(1) A shipowner shall provide seafarers with protective equipment and protective devices, etc., and prohibit them from using machinery without a protective device.
(2) A shipowner shall have a seafarer who has certain experience or technical skill engage in dangerous work on a ship, as prescribed by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4) When an occupational accident, etc. of a seafarer occurs, a shipowner shall immediately report such fact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Oceans and Fisheries.</p> |

「선원법」 제83조(선원의 의무 등)

- ① 선원은 선내 작업 시의 위험 방지와 선내 위생의 유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② 선원은 방호시설이 없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기계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Article 83(Obligations, etc. of Seafarers) of the Seafarers' Act

- (1) A seafarer shall observe the matters prescribed by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concerning the prevention of danger when he/she works in a ship and maintenance of hygiene in a ship.
- (2) A seafarer may refuse the use of a machine that has no protective equipment or does not operate properly.

「선원법」 시행규칙 제47조의8(선원의 준수사항)

법 제83조제1항에서 "선내 작업 시의 위험 방지와 선내 위생의 유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
2. 선내 위험장소임을 알리거나 선원의 접근이 금지·제한되는 장소임을 알리는 표지에 표시된 지시에 따를 것
3. 화물창 안에서의 작업, 용접작업, 도료작업,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는 작업, 전기를 사용하는 작업, 어로작업, 높은 곳에서의 작업, 선체 외부작업 및 얼음을 제거하는 작업 등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벨트, 안전그물망 및 구명의 등의 보호기구나 장비를 사용할 것
4. 거주환경의 청결유지 등 개인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 것

Article 47-8 (Responsibilities of Seafarers)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eafarers' Act

"Matters prescribed by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concerning the prevention of danger when he/she works in a ship and maintenance of hygiene in a ship" under Article 83 (1) of the Act shall mean the following matters:

- a. Seafarers shall be aware of and observe criteria of safety, health and accident prevention on ship under Article 78 (1) 2 of the Act;
- b. Seafarers shall comply with the instructions on signs which indicate either dangerous space on a ship or restricted area for seafarers;
- c. Where seafarers engage in dangerous work such as work in a hold, welding, painting, work handling heavy objects, work involving electricity, fishing, work aloft, work on outer surface of hull, or de-icing, seafarers shall use protective equipment such as safety belt, safety harness, or lifejacket; and
- d. Seafarers shall take thorough care of personal hygiene such as maintaining cleanliness of his/her residential environment.

「선원법」 제91조(사용제한)

- ④ 선박소유자는 여성선원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임신·출산에 해롭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⑤ 선박소유자는 임신 중인 여성선원을 선내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항해에 대하여 임신 중인 여성선원이 선내 작업을 신청하고, 임신이나 출산에 해롭거나 위험하지 아니하다고 의사가 인정한 경우
 2. 임신 중인 사실을 항해 중 알게 된 경우로서 해당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 ⑥ 선박소유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선원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선내 작업과 위생상 해로운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Article 91(Restrictions on Employment) of the Seafarers' Act

- (4) A shipowner shall not assign work harmful or dangerous to pregnancy or childbirth prescribed by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o a female seafarer.
- (5) A shipowner shall not assign work onboard to a pregnant female seafarer; provided, however,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any of the following cases:
- Where a pregnant female seafarer applies for work onboard with regard to a voyage within the extent prescribed by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a doctor does not deem such work harmful or dangerous to pregnancy or childbirth; or
 - Where a pregnant female seafarer comes to know the fact that she is pregnant while at sea and is engaged in work necessary for the safety of the relevant ship.
- (6) A shipowner shall not assign dangerous work onboard or hygienically harmful work prescribed by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o a female seafarer in whose cases one year has not passed after childbirth.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제2조(선박소유자의 임무)

선박소유자는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제5항에 따라 선내작업시에 발생하는 위험의 방지와 선내위생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선내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용구 등의 공급
2. 선내위생의 유지에 필요한 의약품·위생용품·의료서적 등의 공급
3. 작업 시 안전을 위한 조명장치·안전표시 기타 보조기구의 설치
4. 거주구역·기관실·조리실 등의 환기·채광·조명 및 온도의 유지와 소음 및 진동의 방지등 위생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5. 거주구역 및 창고 등에 쥐·벌레등을 없애기 위한 약품의 공급
6. 산소 및 인체에 유해한 기체 등의 측정에 필요한 기구의 공급. 다만, 냉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연근해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화물창에서의 작업, 높은 곳에서의 작업, 용접작업,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는 작업, 전기류 사용 작업, 어로작업등 위험작업시의 위해방지를 위한 필요한 보호 기구의 공급
8. 선내안전 및 위생관리에 필요한 교육의 실시
9. 선내작업시의 위해방지 및 위생의 유지를 위한 선내안전위생수칙의 제정 및 보급

Article 2(Duties of Shipowner) of the Rules on Safety and Health for Seafarers

A shipowner shall comply with the following matters to prevent danger of work on a ship and maintain hygiene therein under Article 82 (5) of the Seafarers'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 a. Supply of machinery, apparatus, and tools necessary for work on a ship;
- b. Supply of medicine, hygiene products, and medical guide books necessary to maintain hygiene on a ship;
- c. Installation of lighting devices, safety signs, and other auxiliary devices for safety for work;
- d. Installation facilities necessary to maintain an appropriate level of hygiene such as ventilation, skylights and lighting in accommodation, engine rooms and galleys, etc., maintenance of temperature, and prevention of noise and vibration, etc.;
- e. Supply of pesticides to get rid of mice or bugs from accommodation and storage rooms, etc.;
- f. Supply of tools necessary to measure oxygen or gases hazardous to human body, etc.; provided, however,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coastal fishing vessels which are not equipped with refrigerating facilities;
- g. Supply of protective apparatus necessary to prevent injury from dangerous work such as work in hold, work aloft, welding, work involving heavy objects, work involving electricity, and fishing operation, etc.;
- h. Implementation of education necessary for safety on a ship and hygiene management; and
- i. Establishment and supply of safety and hygiene rules on a ship necessary to prevent injury from work and maintain hygiene therein.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제3조(위험한 선내작업등)

- ①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위험한 선내작업이란 다음 각호의 작업을 말한다.
1. 양모기(달줄을 감거나 푸는 기계)·권양기(도르래를 이용하여 밧줄이나 쇠사슬로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기계)를 조작하는 작업
 2. 하역용 장비를 조작하는 작업
 3. 바닥에서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보조 장비를 사용하여 하는 작업
 4. 몸의 중심을 선체 밖으로 내놓고 하는 작업
 5.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6. 인체에 유해한 가스를 검지하는 작업
 7. 위험화물의 상태를 점검하는 작업
 8. 감전의 우려가 있는 전기공사작업
 9. 금속의 용접·절단 또는 가열작업
- ② 선박소유자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위험한 선내작업에 종사시킬 수 없다.
1.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6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당해 작업을 할 수 있는 자로서 국가에서 인정한 해당자격증을 소지한 자
 2. 선원법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달직부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3. 선박직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

Article 3(Dangerous Work on Ship, etc.) of the Rules on Safety and Health for Seafarers

- (1) Dangerous work under Article 82 (2) of the Act means the work as follows:
- a. Work involving an operation of capstan or winch;
 - b. Work involving an operation of cargo handling equipment;
 - c. Work involving an use of auxiliary equipment at two meters or higher above the ground;
 - d. Work with worker's balance on the outside of hull;
 - e. Work at a site with potential risk of lack of oxygen;
 - f. Work to detect harmful gases to human body;
 - g. Work to detect the status of harmful cargo;
 - h. Electric work with risk of electric shock; and
 - i. Work to weld, cut, or heat a metal.
- (2) A shipowner shall not have a person engaged in a dangerous work on a ship unless he/she falls under the following sub-paragraphs under Article 82 (2) of the Act:
- a. A person who has either working experience in a work under the above provision of each sub-paragraph for six months or longer or is able to perform the corresponding work thereto and holds a relevant qualification recognized by the government;
 - b. A person who has completed the training for watch-keeping ratings under the provision of Attached Table 2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Seafarers' Act; and
 - c. A person who has obtained a certificate of competency under Article 4 of the Ship Officer's Act.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제4조(안전담당자의 선임)

- ① 선박소유자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선내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고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선박에 기관장 또는 2년 이상 승선 근무한 경력이 있는 기관사 중에서 안전담당자 1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이 10인 이하인 선박의 경우에는 선장을 안전담당자로 할 수 있다.
- ② 위험물 선박 운송 및 저장 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상시 운송하는 선박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 외에 1등 항해사를 위험물안전담당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이 10인 이하인 선박의 경우에는 위험물안전담당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Article 4(Appointment of Ship Safety Officer) of the Rules on Safety and Health for Seafarers

- (1) A shipowner shall appoint one ship safety officer among engineers who either served as a chief engineer officer on a ship or has seagoing service of two years or longer to prevent danger of work on a ship and to implement matters prescribed in this rule under Article 82 (2) of the Act; provided, however, that a master may be appointed as a ship safety officer in case that the number of seafarers is less than ten persons on board.
- (2) A chief officer shall be appointed as a ship safety officer of dangerous goods in addition to the person on a ship carrying dangerous goods under the provision of sub-paragraph 1 of Article 2 of rules on carriage and storage of dangerous goods at all times; provided, however, that a ship may be exempted therefrom in case that the number of seafarers is less than ten persons onboard.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제5조(안전담당자의 임무)

- ① 안전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선내작업상의 안전도 확인 및 적절한 작업인원의 배치
 2. 안전장비·위험탐지기구·소화기구·보호기구 기타 위험방지를 위한 설비·용구 등의 비치 및 점검
 3. 작업 중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의 응급조치 또는 방지조치
 4. 안전장비 및 보호기구등의 사용방법과 안전수칙 기타 작업의 안전에 관한 교육
 5. 선내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관
 6. 기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
- ② 위험물안전담당자는 위험물의 취급과 관련된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Article 5(Duties of Ship Safety Officer) of the Rules on Safety and Health for Seafarers

- (1) A ship safety officer shall perform the duties under any of the following;
- a. Check for safety level of work on a ship and arrangement for appropriate number of seafarers;
 - b. Equipping with and inspection for safety equipment, danger detection devices, fire equipment, protection equipment and other facilities and tools for danger prevention;
 - c. Emergency or preventive measures when dangerous incident has occurred or is likely to occur during work;
 - d. Education for how to use safety equipment and protective equipment, safety rules,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safety of work;
 - e. Preparation and keeping records for safety management on a ship; and
 - f. Other matters necessary for safety measures.
- (2) A ship safety officer of dangerous goods shall perform the duties under any sub-paragraph of above paragraph pursuant to the handling thereof.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제6조(개선 의견의 제출 등)

- ① 안전담당자 및 위험물안전담당자는 소관업무에 관한 개선의견을 기록 유지하고 이를 선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선장이 개선의견을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 ② 선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의견의 보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의견을 보고받은 선박소유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Article 6(Submission of Improvement Proposals, etc.) of the Rules on Safety and Health for Seafarers

- (1) A ship safety officer or ship safety officer of dangerous goods shall prepare and keep records of improvement proposals regarding his/her duties concerned and report thereof to a master; provided, however, that the improvement proposal may be directly reported to a shipowner where a master to whom the improvement proposal is reported has failed to report to a shipowner.

| | | |
|----|--|---|
| | | <p>(2) Where a master has the report of the improvement proposal, he/she shall review and report thereon to a shipowner.</p> <p>(3) A shipowner to whom the improvement proposal is reported shall take measures necessary for improvement.</p> |
| 12 | 선내 의료 관리
On-board
medical care
(Reg. 4.1) | <p>「선원법」 제82조(선박소유자 등의 의무)</p> <p>③ 선박소유자는 감염병, 정신질환, 그 밖의 질병을 가진 사람 중에서 승무가 곤란하다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원을 승무시켜서는 아니 된다.</p> <p>⑤ 선박소유자는 선내 작업 시의 위험 방지, 의약품의 비치와 선내위생의 유지 및 이에 관한 교육의 시행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p> <p>⑥ 선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박이 기항하고 있는 항구에서 선원이 의료기관에서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를 받기를 요구하는 경우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p> <p>Article 82(Responsibility of Shipowners etc.) of the Seafarers' Act</p> <p>(3) A shipowner shall provide seafarers with protective equipment and protective devices, etc., and prohibit them from using machinery without a protective device.</p> <p>(5) A shipowner shall observe the matters prescribed by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concerning the prevention of danger when seafarers work on a ship, provision of medicine and medical supplies, maintenance of hygiene on the ship and providing training thereon, etc.</p> <p>(6) Unless there is a unavoidable reason, where a seafarer requests a master to allow him/her to be treated for his/her injury or disease in a medical institution in the port where a ship is calling, the master shall not refuse such a request.</p> <p>「선원법」 제84조(의사의 승무)</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에 의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3일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최대 승선인원이 100명 이상인 선박(어선은 제외한다)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모선식(母船式)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p>Article 84(Medical Doctors in the Service of a Ship) of the Seafarers' Act</p> <p>The owner of any of the following ships shall have a doctor work on board the ship: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shipowner has obtained approval from the competent maritime affairs and port authoritie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p>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A ship engaged in an international voyage for not less than three days and the maximum number of persons on board is not less than 100 (excluding a fishing vessel); b. A fishing vessel engaged in mother ship type fishery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p>「선원법」 제85조(의료관리자)</p> <p>① 의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선박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선박에 의료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박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원양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선박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 <p>② 제1항에 따른 의료관리자(이하 "의료관리자"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발급된 의료관리자 자격증을 가진 선원(18세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양항만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제2항에 따른 의료관리자 자격증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졌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다.</p> <p>④ 의료관리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 내의 의료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p> |

Article 85(Person in Charge of Medical Service) of the Seafarers' Act

- (1) The owner of any of the following ships among ships that need not have a doctor work on board shall have a person in charge of medical service on a ship: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case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A ship the gross tonnage of which is more than 5,000 tons and the navigation area of which is an ocean area assigned pursuant to Article 8 (3) of the Ship Safety Act;
 - A fishing vessel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2) A person in charge of medical servi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person in charge of medical service") under paragraph (1) shall be elected from among seafarers (excluding a person under 18 years of age) who have a certificate of qualifications for a person in charge of medical service issued pursuant to paragraph (3):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a shipowner obtains approval therefor from the competent maritime affairs and port authorities owing to extenuating circumstances.
- (3)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issue a certificate of qualifications for a person in charge of medical service under paragraph (2) to a person who has passed an examination conducted by him/her,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or a person whom he/she deems to have knowledge and experience equal to or higher than the level of a person who has passed the examination.
- (4) A person in charge of medical service shall be engaged in business necessary for medical service in a ship,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선원법」 제86조(응급처치 담당자)

- ① 제84조 또는 제85조제1항에 따른 의사나 의료관리자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선박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선박에 응급처치를 담당하는 선원(이하 "응급처치 담당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어선은 제외한다)
 - 여객정원이 13명 이상인 여객선
- ② 선박소유자는 응급처치 담당자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선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Article 86(Person in Charge of Medical First Aid) of the Seafarers' Act

- (1) The owner of any of the following ships among ships that need not have a doctor under Article 84 or a person in charge of medical service under Article 85 (1) work on board shall have a seafarer in charge of first aid (hereinafter referred to as "person in charge of first aid") in a ship:
- A ship the navigation area of which is more than the coastal waters (excluding a fishing vessel);
 - A passenger ship the passenger capacity of which is not less than 13 persons.
- (2) A shipowner shall elect a person in charge of first aid from among seafarers who have completed education concerning first aid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선원법 시행규칙」 제52조(의료관리자의 업무)

- ① 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의료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선원의 건강관리 및 보건지도
 - 선내의 작업환경위생 및 거주환경위생의 유지
 - 식료 및 용수의 위생유지
 - 의료기구, 의약품, 그 밖의 위생용품 및 의료서적 등의 비치·보관 및 관리
 - 선내의료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관리
 - 선내환자의 의료관리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기구, 의약품 등의 비치·보관 및 관리는 의료관계 법령과 국제노동기구의 「선내의료함 내용물에 관한 권고」에 따른다.
- ③ 선장 및 의료관리자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따른 표준의료보고서에 따라 선내환자의 의료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성된 내용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 | |
|----|---|--|
| | | <p>Article 52(Affairs of Medical Care Person)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eafarers' Act</p> <p>(1) Affairs of medical care person under Article 85 (4) of the Act shall be as follows:</p> <ol style="list-style-type: none"> Health management and health instruction for seafarers; Maintenance of hygiene of work and habitable environment on a ship; Maintenance of hygiene of food and water; Maintenance and keeping of medical equipment, medicine, other hygienic goods and medical books, etc.; Management and preparation of medical care records on a ship; and Matters pursuant to medical care of patients onboard a ship. <p>(2) Maintenance and keeping of medical equipment and medicine under paragraph (1) d, shall comply with medical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s well as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s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Contents of Medicine Chests onboard.</p> <p>(3) Master and medical care person shall record and manage medical records of patients onboard a ship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 medical report under Attached Form No. 25 (2). In such cases, information on the form shall be kept confidential.</p> |
| 13 | <p>선내 불만처리절차
On-board complaint procedures
(Reg.5.1.5)</p> | <p>「선원법」 제129조(감독기관 등에 대한 신고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원은 선박소유자나 선장이 이 법, 「근로기준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나 선장에게 그 불만을 제기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선원노동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제1항에 따라 불만을 제기하거나 신고한 것을 이유로 그 선원과의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제기되는 선원의 불만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선박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원의 선내 불만 제기 방법 선내 불만 처리절차도 선내 고충처리 담당자 제3호에 따른 선내 고충처리 담당자의 임무와 권한에 관한 사항 해양항만관청, 선원노동위원회 등 선원의 근로·인권 관련 기관의 담당자 연락처 <p>Article 129(Reporting to Supervisory Agencies) of the Seafarers' Act</p> <p>(1) Where a seafarer recognizes the existence of the fact that a shipowner or master has violated this Act, the Labour Standards Act or an order issued under this Act, he/she may lodge a complaint with the shipowner or master, or report the fact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Oceans and Fisheries, seafarers' labour inspector or the Seafarers Labour Relations Commission a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p> <p>(2) A shipowner shall not cancel a seafarer employment contract with a seafarer or treat him/her unfavorably for reason that he/she has lodged a complaint or filed a report thereon pursuant to paragraph(1).</p> <p>(4) A shipowner shall establish procedures for the handling of complaints on his/her ship and post a notice of the same in a conspicuous place on a ship, including the matters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to handle complaints lodged by seafarers pursuant to paragraph(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Ways through which a seafarer may raise a complaint on a ship; Procedural chart that shows handling of a complaint on a ship; A person in charge of grievance settlement who deals with the complaint of a seafarer on a ship; Matters concerning roles and authority of a person in charge of grievance settlement on a ship; and Contact information of institutions related to seafarers' labor and human right such a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Oceans and Fisheries, the Seafarers Labour Relations Commission, etc. |

| | | |
|----|--|---|
| | | <p>「선원법 시행령」 제49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선원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법·「근로기준법」이나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나 기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 <p>Article 49(Report to Supervisory Agencies)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eafarers' Act
 In case that a seafarer is to report pursuant to Article 129 (1) of the Act, he/she shall submit documents or other materials to prove the fact that the shipowner or master has violated the Act, the Labour Standards Act or orders issued pursuant to the Act.</p> |
| 14 | 임금의 지급
Payment of wages
(Reg. 2.2) | <p>「선원법」 제30조(강제저축 등의 금지)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 관리를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p> <p>Article 30(Prohibition of Compulsory Savings) of the Seafarers' Act
 No shipowner shall enter into a contract that stipulates compulsory savings or the management of savings annexed to a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p> <p>「선원법」 제31조(상계의 제한)
 선박소유자는 선원에 대한 채권과 임금지급의 채무를 상계(相計)하지 못한다. 다만, 상계금액이 통상임금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Article 31(Restrictions on Offset) of the Seafarers' Act
 No shipowner shall offset his/her claim on a seafarer by his/her obligation to pay wages; provided, however,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amount of offset does not exceed 1/3 of ordinary wages.</p> <p>「선원법」 제52조(임금의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선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원이 청구하거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가 지정하는 가족이나 그 밖의 사람에게 통화로 지급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이 청구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장에게 임금의 일부를 상륙하는 기항지(寄港地)에서 통용되는 통화로 직접 선원에게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⑤ 임금을 일할계산(日割計算)하는 경우에는 30일을 1개월로 본다.</p> <p>Article 52(Payment of Wages) of the Seafarers' Act
 (1) A shipowner shall pay wages in full in currency directly to a seafarer; provided, however, that where there are special provisions in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r a collective agreement, he/she may deduct part of wages or pay wages by means other than currency.
 (2) A shipowner shall pay wages on a regular fixed date not less than once a month; provided, however,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payment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such as wages paid temporarily, an allowance, and others corresponding thereto.</p> |

- (3)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re a seafarer requests or there are special provisions in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r a collective agreement, a shipowner shall pay all or some of wages to his/her family or other person designated by him/her in currency or by means of deposit with a financial company, etc.
- (4)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re a seafarer who is in service onboard a ship requests, a shipowner shall have a master pay some of the wages to a seafarer directly in currency in common use in the port of call.
- (5) Where wages are calculated by days, 30 days shall be regarded as one month.

「선원법」 제53조(기일 전 지급)

선박소유자는 선원이나 그 가족의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선원이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금 지급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Article 53(Payment before Due Date) of the Seafarers' Act

Where a seafarer requests a shipowner to pay wages to make up for expenses incurred in childbirth, disease or accident of a seafarer or his/her family, or other extraordinary case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the shipowner shall pay him/her for labour he/she has already provided even before the due date of payment of wages.

「선원법」 제58조(임금대장)

선박소유자는 임금대장을 갖추어 두고,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Article 58(Payroll) of the Seafarers' Act

A shipowner shall keep a payroll and state matter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such as matters that become the basis of the calculation of wages, etc., therein, whenever he/she pays wages.

「선원법」 제59조(최저임금)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원의 임금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문을 하여야 한다.

Article 59(Minimum Wages) of the Seafarers' Act

Where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deems it necessary, he/she may fix the minimum amount of wages of seafarers. In such cases, he/she shall seek advice prescribed by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선원법」 제62조(시간외근로수당 등)

①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원에게 시간외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시간외근로를 한 선원(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상휴식을 받은 선원은 제외한다)
2. 휴일에 근로를 한 선원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종(船種), 선박의 크기, 항해 구역에 따른 근로의 정도·실적 등을 고려하여 일정액을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시간외근로 중 1주간에 4시간의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제70조에 따른 유급휴가 일수에 1개월의 승무기간마다 1일을 추가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Article 62(Overtime Work Allowance) of the Seafarers' Act

(1) A shipowner shall pay any of the following seafarers an amount at least equivalent to 150/100 of ordinary wages for his/her overtime work or holiday work as an overtime work allowance:

- a. A seafarer who does overtime work pursuant to Articles 60 (1), (2) and (6)(excluding a seafarer who is given a rest in compensation therefor pursuant to paragraph (7) of the same Article); or
- b. A seafarer who works on a holiday.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 shipowner may put a system into operation by which he/she pays a certain fixed amount of money as an overtime work allowance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the type of ship, the size of ship, working level and performance of a seafarer depending upon the trading areas, as stipulated by a collective agreement, the rules of employment or a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5)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 shipowner shall grant additional one day paid leave for every one month of working onboard to the number of days of paid leave under Article 70 for overtime work of 4 hours a week among overtime work under Articles 60 (1), (2) and (6) in lieu of paying an overtime work allowance.

「선원법」 제152조(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

실업수당, 퇴직금, 송환비용, 송환수당, 유기구제비용 또는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Article 152(Prohibition of Transfer or Foreclosure) of the Seafarers' Act

The right to receive unemployment allowance, retirement allowance, expenses for repatriation, repatriation allowance, the relief expenses for abandonment, injury and disease compensation or accident compensation shall not be subject to transfer or foreclosure.

「선원법 시행령」 제17조(임금의 지급)

① 법 제52조제2항 단서에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 근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근속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되는 장려금·능력수당 또는 상여금
3.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② 선박소유자는 법 제52조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급여명세서를 선원에게 주어야 한다.

1. 임금의 금액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구성항목에 관한 사항
3. 적용환율에 관한 사항

Article 17(Payment of Wages)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eafarers' Act

(1) "Wages paid temporarily, an allowance, and others corresponding thereto" in the proviso of Article 52 (2) of the Act shall mean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 a. Continuous work allowance to be paid for work that is sustained for certain periods exceeding one month;
- b. Incentive and efficiency allowance, or bonus that is calculated for reasons that continue more than one month; or
- c. Other types of allowance that are paid irregularly.

(2) A shipowner shall provide a seafarer with details of wages that include the following sub-paragraphs pursuant to Article 52 of the Act, when he/she pays wages:

- a. Matters concerning the amount of wages;
- b. Matters concerning items that consist wages; and
- c. Matters concerning applied exchange rates.

「선원법 시행령」 제20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1. 선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고용연월일 및 직책
2. 임금 및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3.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
4. 시간외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5. 임금의 내역별 금액
6. 법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금액

| | | |
|----|--|---|
| | | <p>Article 20(Matters to be Recorded in Wages Ledger)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eafarers' Ac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The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mployment date, and duty of a seafarer; 2. The matters used as basis for calculation of wage and family allowances; 3. Days and hours of work; 4. Hours of work in case of overtime work or holiday work; 5. Amount of wages by categories; and 6. Reasons for deduction and the deducted amount in case of deduction in part of wages pursuant to the proviso of Article 52 (1) of the Act. <p>「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p> <p>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p> <p>Article 36 (Settlement of Payments) of Labour Standards Act</p> <p>When a worker dies or retires, the employer shall pay the wages, compensations, and other money or valuables within 14 days after the cause for such payment occurred: Provided, That the period may, under special circumstances, be extended by mutual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p> |
| 15 | <p>송환 및 유가족제에 대한 재정보증</p> <p>Financial security for repatriation (Reg.2.5)</p> | <p>「선원법」 제38조(송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거주지 또는 선원근로계약의 체결지가 아닌 항구에서 하선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선원의 거주지 또는 선원근로계약의 체결지 중 선원이 원하는 곳까지 지체 없이 송환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의 요청에 의하여 송환에 필요한 비용을 선원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환에 든 비용을 선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선박소유자는 6개월 이상 승무하고 송환된 선원에게는 송환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청구할 수 없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하선한 경우 2. 선원이 제22조제3항에 따라 하선 징계를 받고 하선한 경우 3.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부담할 비용은 송환 중의 교통비, 숙박비, 식비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말한다. ④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선원에게 송환비용을 미리 내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p>Article 38(Repatriation) of the Seafarers' Ac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Where a seafarer leaves a ship at the port which is not the place of his/her residence or a place where he/she concluded a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a shipowner shall repatriate him/her to a place where he/she wishes to be repatriated, either a place of his/her residence or a place where he/she concluded the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without delay at the cost of the shipowner and on his/her own responsibility; provided, however,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shipowner reimburses expenses incurred in the repatriation at the request of the seafarer.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re a seafarer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cases, a shipowner may claim expenses incurred in the repatriation against him/her; provided, however, that the shipowner shall not claim an amount of money equivalent to 50/100 of the expenses incurred in the repatriation of a seafarer repatriated after he/she has been in service onboard a ship for six months or more: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Where a seafarer leaves a ship at his/her discretion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b. Where a seafarer leaves a ship after he/she has been disciplined by being made to leave the ship pursuant to Article 22 (3); or c. Where a seafarer falls under the reasons prescribed by a collective agreement, the rules of employment or a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

(3) The amount of money to be spent by a shipowner pursuant paragraph (1) shall include transportation, accommodation, and meals expenses incurred in the repatriation and other expenses prescribed by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4) In making a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with a seafarer, no shipowner shall request the seafarer to pay expenses for repatriation in advance.

「선원법」 제42조의2(유기구제보험 등의 가입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유기된 선원을 구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유기구제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선박소유자가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선원을 송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송환에 필요한 비용을 선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선박소유자가 제52조에 따른 임금을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선원과의 연락을 두절하는 등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한 경우
3. 선박소유자가 이 법 또는 선원근로계약에 따라 선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식료품, 물,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연료 및 의료지원 등 선상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② 유기구제보험등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제38조에 따른 송환비용
2. 제39조에 따른 송환수당
3. 제1항제3호에 따른 식료품, 물,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연료 및 의료지원 등 선상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드는 비용

③ 유기구제보험등에 가입하는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유기구제보험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선원을 피보험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Article 42-2(Taking out Relief Insurance, etc. for Abandonment) of the Seafarers' Act

(1) A shipowner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shall take out relief insurance policies or join mutual aids, both of which are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lief insurance policies, etc. for abandonment"), so that he/she fully reliefs seafarers who are abandoned due to cause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 a. Where a shipowner fails to repatriate a seafarer pursuant to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38 (1) or pay the expenses for repatriation pursuant to the proviso of the same Article;
- b. Where a shipowner fails to pay wages of 2 months or longer and has unilaterally severed their ties with a seafarer; and
- c. Where a shipowner fails to provide for goods or services, such as food, drink, fuel and medical care necessary for life onboard a ship.

(2) A relief insurance policies, etc. shall guarantee the payment of expenses falling under the following sub-paragraphs;

- a. Expenses for repatriation under Article 38;
- b. Repatriation allowance under Article 39; and
- c. Expenses for goods or services, such as food, drink, fuel and medical care necessary for life onboard a ship.

(3) A shipowner who buys insurance policies, etc. shall designate a seafarer as the insured so that he/she directly claims the insured amount to an relief insurance company, etc.

선원법 제56조(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가입)

① 선박소유자(선박소유자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할 임금 및 퇴직금(이하 "채불임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선원의 채불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기금의 적용을 받는 선박소유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공제 또는 기금은 적어도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제52조에 따른 임금의 최종 4개월분
 2.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최종 4년분
-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업자, 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는 그 퇴직한 선원 또는 지정대리인이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한다.

Article 56 (Taking out Insurance Guaranteeing Wage Claims) of the Seafarers' Act

- (1) A shipowner (including an association of shipowners; hereafter in this Article the same shall apply) shall take out an insurance or become a member of mutual ai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 raise funds to guarantee the payment of wages and a retirement allowance not receivable by a retired seafar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wages in arrears") for rea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a shipowner's bankruptcy, etc.: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a shipowner who is subject to funds to guarantee the payment of wages in arrears of seafarers in accordance with other Acts.
- (2) An insurance, mutual aid or funds under paragraph (1) shall guarantee the payment of wages in arrears falling under all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t least:
- a. Wages for the latest four months under Article 52;
 - b. A retirement allowance for the latest four years under Article 55.
- (3) Notwithstanding Article 469 of the Civil Act, where a retired seafarer claims wages in arrears, an insurer, mutual aid or operator of funds under paragraph (1) shall pay wages in arrears in lieu of a shipowner.

「선원법」 제151조(서류의 선박 내 게시 등)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박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송환 절차, 유기구제보험등의 가입 여부, 유가 구제비용의 청구·지급 절차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
 3. 제56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가입 여부, 체불임금의 청구·지급 절차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

Article 151(Posting of Documents on a Ship, etc.) of the Seafarers' Act

- (1) A shipown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post the following documents in a conspicuous place inside of the ship,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b. Documents in which the repatriation procedures, the taking out of seafarer abandonment insurance, its procedures to claim and pay expenses incurred in preventing seafarers from abandonment, and other matt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re stated;
 - c. Documents in which insurance guaranteeing wage claims, its procedures to claim and pay wages in arrears pursuant to Article 56, and other matt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re stated; and

16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대한
재정보증
Financial
security for
shipowners'
liability
(Reg. 4.2)

「선원법」 제106조(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 등)

- ① 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에 승무하는 모든 선원에 대하여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재해보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선박소유자는 재해보상보험등에 가입할 경우 보험가입 금액은 승선평균임금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재해보상보험등에 가입하는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재해보상보험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재해보상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선원을 피보험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Article 106(Taking out Insurance, etc. for Accident Compensation, etc.) of the Seafarers' Act

- (1) A shipowner shall take out insurance policies or join mutual aids, both of which are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surance policies, etc."), so that he/she fully covers accident compensation described herein for all seafarers who are in service onboard a relevant ship of his or hers.
- (2) In the case that a shipowner buys insurance policies or joins mutual aids, he/she shall make insured amount not less than average on-board wages.
- (3) A shipowner who buys insurance policies, etc. shall designate a seafarer as the insured so that he/she directly claims the insured amount to an insurance company, etc.(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surance company, etc.").

「선원법」 제151조(서류의 선박 내 게시 등)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박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4. 재해보상보험의 가입여부, 보험금의 청구, 지급절차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

Article 151(Posting of Documents on a Ship, etc.) of the Seafarers' Act

- (1) A shipown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post the following documents in a conspicuous place inside of the ship,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d. Documents stating the taking out of an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the claim/payment procedures of compensation, and other matt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성명(Name):

직책(Title):

서명(Signature):

장소(Place):

날짜(Date):

()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DIRECTOR GENERAL OF ()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실질적 동등사항(Substantial equivalencies)

(주석 :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삭제할 것)

(Note : Strike out the statement which is not applicable)

협약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실질적 동등사항은 다음과 같다.

The following substantial equivalencies, as provided under Article VI, paragraphs 3 and 4, of the Convention, except where stated above, are noted (insert description if applicable):

어떠한 실질적 동등사항도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No substantial equivalency has been granted.)

성명(Name): _____

직책(Title): _____

서명(Signature): _____

장소(Place): _____

날짜(Date): _____

()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DIRECTOR GENERAL OF ()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면제사항(Exemptions)

(주석 :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삭제할 것)

(Note : Strike out the statement which is not applicable)

협약의 제3장에 따라 책임당국에 의해 인정된 면제사항은 다음과 같다.

The following exemptions gran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as provided in Title 3 of the Convention are noted:

어떠한 면제사항도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No exemption has been granted.)

성명(Name): _____

직책(Title): _____

서명(Signature): _____

장소(Place): _____

날짜(Date): _____

()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DIRECTOR GENERAL OF ()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2006 해사노동협약」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부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 - Part II

다음 조치사항은 검사 전후에 지속적으로 그 요건에 적합함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 선언서가 첨부되어 있는 해사노동적합증서에서 명시된 선박소유자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The following measures have been drawn up by the shipowner, named in the Maritime Labour Certificate to which this Declaration is attached, to ensure ongoing compliance between inspections.

- | | | |
|----|---|-----|
| 1 | 선원의 최소연령 Minimum age (Reg.1.1) | [] |
| 2 | 건강진단서 Medical certification (Reg.1.2) | [] |
| 3 | 선원의 자격 Qualifications of seafarers (Reg.1.3) | [] |
| 4 | 선원근로계약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s (Reg.2.1) | [] |
| 5 | 인증받은 선원직업소개소의 이용
Use of any licensed or certified or regulated private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 (Reg.1.4) | [] |
| 6 | 근로 또는 휴식 시간 Hours of work or rest (Reg.2.3) | [] |
| 7 | 선박에 대한 승무기준 Manning levels for the ship (Reg.2.7) | [] |
| 8 | 거주설비 Accommodation (Reg.3.1) | [] |
| 9 | 선내 오락시설 On-board recreational facilities (Reg.3.1) | [] |
| 10 | 식량 및 조달 Food and catering (Reg.3.2) | [] |
| 11 | 건강, 안전 및 사고방지 Health and safety and accident prevention (Reg.4.3) | [] |
| 12 | 선내 의료 관리 On-board medical care (Reg.4.1) | [] |
| 13 | 선내 불만처리절차 On-board complaint procedures (Reg.5.1.5) | [] |
| 14 | 임금의 지급 Payment of wages (Reg.2.2) | [] |
| 15 | 송환 및 유기구제에 대한 재정보증 Financial security for repatriation (Reg.2.5) | [] |
| 16 |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대한 재정보증 Financial security for shipowners' liability (Reg.4.2) | [] |

※ 제1부의 각 항목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사항을 위 각 항목의 아래에 기술한 후 해당 항목에 [X]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After describing the measures taken to ensure compliance with each of the items in Part I below those items, please check each of the relevant boxes by [X] mark).

본인은 위의 조치사항들이 그 검사와 제1부에 규정된 요건에 지속적으로 적합함을 보증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음을 증명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above measures have drawn up to ensure ongoing compliance, between inspections, with the requirements listed in Part I.

선박소유자명(Name of shipowner): _____

선박소유자의 주소(Address of shipowner): _____

서명자의 성명: _____

(Name of the authorized signatory)

서명자의 직책: _____

(Title of the authorized signatory)

서명자의 서명: _____

(Signature of the authorized signatory)

날 짜 (Date): _____

선박소유자의 서명 또는 도장: _____

(Stamp or seal of the shipowner)

위의 조치사항들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검토하였으며, 이 선박에 대한 검사 후, 이 선언서 제1부에 규정된 요건에 최초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 제A5.1.3조제10(b)항에 따라서 규정된 목적에 충족됨을 확인하였습니다.

The above measures have been review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have been confirmed as satisfying the purposes set out under Standard A5.1.3, paragraph 10 (b), regarding measures to ensure initial and ongoing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set out in Part I of this Declaration after carrying out the inspection for this ship.

성 명 (Name): _____

직 책 (Title): _____

주 소 (Address): _____

서 명 (Signature):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 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DIRECTOR GENERAL OF ()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_____



해사노동적합증서 MARITIME LABOUR CERTIFICATE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이 증서는 「선원법」 제1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5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지방해양수산청장(인증검사 대행기관)이 발급합니다.

지방해양수산청(인증검사 대행기관) 주소: _____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V and Title 5 of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referred to below as "the Convention")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y Director General of
()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Recognized Organization)
Address of the Office: _____

선박의 제원(Particulars of ship)

선명(Name of ship) : _____
선박번호(Distinctive number or letter) : _____
선적항(Port of registry) : _____
등록일자(Date of registry) : _____
총톤수(Gross tonnage) : _____
IMO 번호(IMO number) : _____
선박의 종류(Type of ship) : _____
선박소유자명(Name of shipowner) : _____
선박소유자의 주소(Address of shipowner) : _____

이 증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합니다.

1. 이 선박은 「선원법」 및 그 하위법령의 요건과 첨부된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규정에 따라 검사 및 검증되었습니다.
2. 「2006 해사노동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록 A5-1에 규정된 선원의 근로 및 생활 기준이 협약을 이행하는 대한민국의 국내요건과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국내요건은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1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This is to certify:

1. That this ship has been inspected and verified to be in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nd the provisions of the attached 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
2. That the seafarers'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specified in Appendix A5-1 of the Convention were found to correspond to the national require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implementing the Convention. These national requirements are summarized in the 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 Part 1.

이 증서는 「선원법」 제123조 및 제137조에 따른 검사를 수검할 것을 조건으로
____년 ____월 ____일까지 유효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_____ subject to inspections in accordance with Standards A5.1.3 and A5.1.4 of the Convention.

이 증서는 _____에서 ____년 ____월 ____일에 발급된 해사노동적합선언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only when the 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 issued at _____ on _____ is attached.

이 증서의 근거가 되는 검사 완료일은 ____년 ____월 ____일입니다.

Completion date of the inspection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 was _____

이 증서는 _____에서 ____년 ____월 ____일에 발급되었습니다.

Issued at _____ on _____.

지방해양수산청장

작인

Director General of ()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Recognized Organization)
(인증검사 대행기관)

(제 3쪽 중 3쪽)

중간인증검사의 확인**Endorsements for mandatory intermediate inspection
and, if required, any additional inspection**

이 증서는 본선이 「선원법」 제137조에 따라 검사되었고, 협약 부록 A5-1에 명시된 선원의 근로 및 생활 기준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내요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ship was inspected in accordance with Standards A5.1.3 and A5.1.4 of the Convention and that the seafarers'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specified in Appendix A5-1 of the Convention were found to correspond to the national require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implementing the Convention.

중간인증검사 서명(Signed) : _____
(Intermediate inspection) 장소(Place) : _____
날짜(Date) : _____

지방해양수산청장 적인

()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Recognized Organization)
(인증검사 대행기관)

추가배서(요구될 경우) (Additional endorsement, if required)

이 증서는 본선이 협약 제A3.1조제3항(재등록 또는 거주구역의 주요개조)에 의한 요구 또는 다른 사유에 따라 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 요건에 지속적으로 적합한지를 검증할 목적으로 특별인증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ship was the subject of an additional inspection for the purpose of verifying that the ship continued to be in compliance with the national requirements implementing the Convention, as required by Standard A3.1, paragraph 3, of the Convention(re-registration or substantial alteration of accommodation) or for other reasons.

특별인증검사(요구될 경우) 서명(Signed) : _____
(Additional inspection, 장소(Place) : _____
if required) 날짜(Date) : _____

지방해양수산청장 적인

()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Recognized Organization)
(인증검사 대행기관)

특별인증검사(요구될 경우) 서명(Signed) : _____
(Additional inspection, 장소(Place) : _____
if required) 날짜(Date) : _____

지방해양수산청장 적인

()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Recognized Organization)
(인증검사 대행기관)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_____



임 시 해 사 노 동 적 합 증 서

INTERM MARITIME LABOUR CERTIFICATE

대 한 민 국
REPUBLIC OF KOREA

이 증서는 「선원법」 제1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5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지방해양수산청장(인증검사 대행기관)이 발급합니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인증검사 대행기관) 주소 _____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V and Title 5 of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referred to below as "the Convention")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y Director General of
()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Recognized Organization)
Address of the Office : _____

선박의 제원(Particulars of ship)

| | |
|--------------------------------------|-------|
| 선명(Name of ship) : | _____ |
| 선박번호(Distinctive number or letter) : | _____ |
| 선적항(Port of registry) : | _____ |
| 등록일자(Date of registry) : | _____ |
| 총톤수(Gross tonnage) : | _____ |
| IMO 번호(IMO number) : | _____ |
| 선박의 종류(Type of ship) : | _____ |
| 선박소유자명(Name of shipowner) : | _____ |
| 선박소유자의 주소(Address of shipowner) : | _____ |

(제2쪽 중 2쪽)

이 증서는 「2006 해사노동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기준 제A5.1.3조 제7항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합니다.

1. 이 선박은 아래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관한 인증을 고려하여 협약 부록 A5-1에 수록된 사항에 대하여 실행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검사되었습니다.
2. 선박소유자는 이 선박이 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관할청 또는 인증검사 대행기관에게 입증하였습니다.
3. 선장은 협약의 요건과 이행책임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4. 해사노동적합선언서를 발급받기 위해 관계 정보가 관할청 또는 인증검사 대행기관에게 제출되었습니다.

This is to certify, for the purposes of Standard A5.1.3, paragraph 7, of the Convention, that:

1. this ship has been inspected, as far as reasonable and practicable, for the matters listed in Appendix A5-1 to the Convention, taking into account verification of items under 2, 3 and 4 below:
2. the shipowner has demonstrated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recognized organization that the ship had adequate procedures to comply with the Convention;
3. the master is familiar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nd the responsibilities for implementation; and
4. relevant information has been submitted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recognized organization to produce a Declaration of the Maritime Labour Compliance.

이 증서는 「선원법」 제137조에 따른 검사를 수검할 것을 조건으로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 유효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_____ subject to inspections in accordance with Standards A5.1.3 and A5.1.4.

상기 제1호에 규정하는 검사의 완료일은 _____년 _____월 _____일입니다.

Completion date of the inspection referred to under 1 above was _____.

이 증서는 _____에서 _____년 _____월 _____일에 발급되었습니다.

Issued at _____ on _____.

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Director General of ()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Recognized Organization)
(인증검사 대행기관)

■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7. 7. 19.>

인증검사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
| 신 청 인 | 사업장 명칭 | | 대표자 성명 | |
| | 신청인 성명 | | 신청인 부서 | |
| | 주 소 (전화번호 :) | | | |
| | 전 화 | 팩 스 | | |
| 검사종류 | []최초인증검사 []갱신인증검사 []중간인증검사 []임시인증검사 []특별인증검사 | | | |
| 검사사유
(특별인증검사
만 기재) | | | | |
| 선박상세 | 선명 | 선종 | 항해구역 | |
| | 선박번호 | IMO 번호 | 총톤수 | |
| 해사노동적합증서 유효일 | | | 검사 희망일 | |
| 검사를 받고자하는 장소 | | | 대리점 연락처 | |

「선원법」 제137조 및 「선원법 시행규칙」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최초, []갱신, []중간, []임시, []특별 인증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 | | | | | |
|--------|---|----------------------|---|--------------|---|---------|---|---------|
| 구비서류 | - 해사노동 적합선언서 제1부, 제2부(각 2부씩)
- 선박국적증서(국/영문) 사본
- 국제톤수증서(ITC) 사본 | 수수료 | | | | | | |
| | |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름. | | | | | | |
| 처리절차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서류심사
인증검사 | → | 결 재 | → | 발 급 |
| 신청인 | | 지방해양수산청 | | 지방해양수산청 | | 지방해양수산청 | | 지방해양수산청 |

■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7. 7. 19.>

[] 해사노동적합증서
 []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1부 재발급신청서
 []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부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
|------|------|------|

| | | |
|------|----------------|---|
| 신청인 | 사업장 명칭 | |
| | 주소
(전화번호:) |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대표자) |
| 해당선박 | 선 명 | 총톤수 |
| | 해사노동적합증서번호 | 재발급 받으려는 증서의 종류
[] 해사노동적합증서
[] 해사노동적합선언서 1부
[] 해사노동적합선언서 2부 |
| | 해사노동적합증서 발급 일자 | |
| 신청사유 | | |

「선원법 시행규칙」 제58조의5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해사노동적합증서
 []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1부
 []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부

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재발급에 관한 사유서
2. 해사노동적합증서 또는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원본(절어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처리절차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서류심사 | → | 결 재 | → | 발 급 |
| 신청인 | |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 | | | | | |

■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 <신설 2014.1.8>

(앞쪽)

MLC INSPECTOR

사 진
3cm × 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REPUBLIC OF KOREA

60mm × 90mm [보존용지(1종) 120g/m²]

(뒤쪽)

ID No. ____

MLC INSPECTOR ID CARD

The bearer of this identification card is duly appointed as a Inspector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under the regulation 5.1.4 of Maritime Labor Convention 2006

date of issu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직인

(색상: 연하늘색)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3.3.24>

| 인증검사 대행기관 지정신청서 | | | | | | 처리기간
30일 | |
|--|---|--|--------------|--|--|-------------|--|
| 신
청
인 | ①명칭(상호) | | | | | | |
| | ②대표자의 성명 | | | | | | |
| | ③주소 및 전화번호 | | () - | | | | |
| ④대행업무의 범위 | | | | | | | |
| 「선원법」 제140조제1항 및 「선원법 시행규칙」 제58조의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 | | | |
| <div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div> <div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div> | | | | | | | |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 | | | |
| 첨
부
서
료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 해양수산부장관 확인사항 | | | 수수료 | |
| | 1 다음 각 목의 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 인증검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추는 것
나. 인증검사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인력을 7명 이상 확보할 것
다. 11개 이상의 지방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 경우 7개 이상의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각각 1개 이상의 지방사무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라. 4개 이상의 해외사무소를 확보할 것
2 인증검사업무의 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3 인증검사업무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내부규정
4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함) |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없음 | |

210_{mm}×297_{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3.3.24>

인증검사 대행기관 지정서

①기 관 명

②대 표 자

③소 재 지

④업 무 범 위

「선원법 시행규칙」 제58조의7제2항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인증검사 대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7. 3. 15.>

| 이 의 신 청 서 | | | | 처리기간
14 일 |
|---|------------|--|--------------|--------------|
| 신 청 인 | ①상 호(명 칭) | | | |
| | ②주소 및 전화번호 | | () - | |
| | ③성명(대표자) | | ④생년월일(성별) | |
| ⑤인 증 검 사 기 관 명 | | | ⑥인 증 검 사 일 | |
| 해 당 선 박 | ⑦선 명 | | ⑧총 톤 수 | |
| | ⑨선 박 의 종 류 | | ⑩인 증 검 사 종 류 | |
| | ⑪신 청 사 유 | | | |
| ⑫비 고 | | | | |
| <p>「선원법」 제141조제1항 및 「선원법 시행규칙」 제58조의9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박의 인증검사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해양수산부장관 귀하</p> | | | | |
| 첨부서류 : 사유서 | | | | 수수료 |
| | | | | 없 음 |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6. 30.]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2021. 6. 30.,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051 - 773 - 574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원법」 제82조·제83조 및 제91조에 따른 선원의 선내작업시의 위험의 방지와 선내위생의 유지를 위하여 선박소유자 및 선원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22., 2012. 5. 18.>

제2조(선박소유자의 임무) 선박소유자는 「선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제5항에 따라 선내작업시에 발생하는 위험의 방지와 선내위생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 8. 22., 2012. 5. 18.>

1. 선내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용구등의 공급
2. 선내위생의 유지에 필요한 의약품·위생용품·의료서적등의 공급
3. 작업시 안전을 위한 조명장치·안전표시 기타 보조기구의 설치
4. 거주구역·기관실·조리실등의 환기·채광·조명 및 온도의 유지와 소음 및 진동의 방지등 위생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5. 거주구역 및 창고등에 쥐·벌레등을 없애기 위한 약품의 공급
6. 산소 및 인체에 유해한 기체등의 측정에 필요한 기구의 공급. 다만, 냉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연근해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화물창에서의 작업, 높은 곳에서의 작업, 용접작업,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는 작업, 전기류사용작업, 어로작업등 위험작업시의 위해방지를 위한 필요한 보호기구의 공급
8. 선내안전 및 위생관리에 필요한 교육의 실시
9. 선내작업시의 위해방지 및 위생의 유지를 위한 선내안전위생수칙의 제정 및 보급

제3조(위험한 선내작업등) ①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위험한 선내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12. 5. 18., 2021. 6. 30.>

1. 양묘기(닷줄을 감거나 푸는 기계)·권양기(도르래를 이용하여 밧줄이나 쇠사슬로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기계)를 조작하는 작업
2. 하역용장비를 조작하는 작업
3. 바닥에서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보조장비를 사용하여 하는 작업
4. 몸의 중심을 선체밖으로 내놓고 하는 작업
5.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6. 인체에 유해한 가스를 검지하는 작업
7. 위험화물의 상태를 점검하는 작업

8. 감전의 우려가 있는 전기공사작업

9. 금속의 용접·절단 또는 가열작업

②선박소유자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위험한 선내작업에 종사시킬 수 없다. <개정 2012. 5. 18.>

1.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6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당해 작업을 할 수 있는 자로서 국가에서 인정한 해당자격증을 소지한 자
2. 선원법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당직부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3. 선박직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

제4조(안전담당자의 선임) ①선박소유자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선내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고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선박에 기관장 또는 2년 이상 승선근무한 경험이 있는 기관사중에서 안전담당자 1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이 10인 이하인 선박의 경우에는 선장을 안전담당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8.>

②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상시 운송하는 선박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외에 1등 항해사를 위험물안전담당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이 10인 이하인 선박의 경우에는 위험물안전담당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안전담당자의 임무) ①안전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선내작업상의 안전도 확인 및 적절한 작업인원의 배치
 2. 안전장비·위험탐지기구·소화기구·보호기구 기타 위험방지를 위한 설비·용구등의 비치 및 점검
 3. 작업중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의 응급조치 또는 방지조치
 4. 안전장비 및 보호기구등의 사용방법과 안전수칙 기타 작업의 안전에 관한 교육
 5. 선내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관
 6. 기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
- ②위험물안전담당자는 위험물의 취급과 관련된 제1항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개선의견의 제출등) ①안전담당자 및 위험물안전담당자는 소관업무에 관한 개선의견을 기록 유지하고 이를 선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선장이 개선의견을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선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의견의 보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의견을 보고받은 선박소유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14. 9. 19.>

제8조(작업제한) ①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18세 미만의 선원에게 시켜서는 아니되는 작업은 다음의 작업으로 한다. <개정 2012. 5. 18.>

1. 부식성물질, 독물 또는 유해성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화물창 또는 탱크안의 청소작업
2. 유해성의 도료 또는 용제를 사용하는 작업
3. 직접 햇빛을 받으며 장시간하는 작업
4. 추운 장소에서 장시간하는 작업
5. 냉동고 안에서 장시간하는 작업
6. 수중에서 선체 또는 추진기를 검사·수리하는 작업
7. 선체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이 물에 잠긴 상태에서 탱크 또는 보일러의 내부에서 행하는 수리작업
8. 먼지 또는 분말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장시간하는 작업
9. 30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다루는 작업
10. 알파선·베타선·중성자선 기타 유해한 방사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작업

② 선박소유자는 법 제91조제4항에 따라 여성선원을 제1항제1호·제2호·제9호·제10호 및 제3조제1항제6호의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8. 22., 2012. 5. 18.>

③ 법 제91조제5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항해”란 가장 가까운 국내 의항에 2시간 이내에 입항할 수 있는 항해를 말한다. <신설 2008. 8. 22., 2012. 5. 18., 2013. 3. 24.>

④ 선박소유자는 법 제91조제6항에 따라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선원을 제1항 각 호의 작업, 제3조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8. 8. 22., 2012. 5. 18.>

[제목개정 2008. 8. 22.]

부칙 <제837호, 1986. 6. 4.>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4조 및 법 제115조”를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6조 및 제117조”로 한다.

제2조제2항중 “법 제115조”를 “법 제117조”로 한다.

제5조제1항중 “법 제117조제1항”을 “법 제119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3항중 “법 제114조제1항”을 “법 제116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44호, 2008. 8.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5호, 2012. 5. 18.> (선원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선원의안전및위생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선원법 제76조 및 제81조”를 “「선원법」 제82조、제83조 및 제91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1항”을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제5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6조제2항에서 ” 위험한 선내작업 “이라 함은”을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위험한 선내작업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를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81조제4항”을 “법 제91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81조제5항제1호에서 ”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항해 “란”을 “법 제91조제5항제1호에서 ”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항해 “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81조제6항”을 “법 제91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호, 2013. 3. 24.>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 까지 생략

2\$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2% 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99호, 2014. 9. 19.> (선원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3조: 「2006 해사노동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선원의안전및위생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486호, 2021. 6. 3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선박직원법

[시행 2025. 12. 17.] [법률 제21053호, 2025. 9. 16.,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051 - 773 - 5741

제1장 총칙 <개정 2011. 6. 15.>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乘務)할 사람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6. 1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9., 2014. 3. 24., 2020. 2. 18.>

1.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과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 가.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다만,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 1) 여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
 -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된 어선
 - 3)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에 따라 영업구역을 바다로 하여 면허를 받거나 신고된 유선·도선
 - 4) 수면비행선박
 - 나. 주로 노와 샷대로 운전하는 선박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 1의2. “한국선박”이란 선박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 가.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
 - 나.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선박
 - 다.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사법인(商事法人)이 소유한 선박
 - 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다목의 상사법인 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동대표자인 경우에는 그 전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2. “외국선박”이란 한국선박 외의 선박을 말한다.
3. “선박직원”이란 해기사(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외국의 해기사를 포함한다)로서 선박에서 선장·항해사·기관장·기관사·전자기관사·통신장·통신사·운항장 및 운항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해기사”(海技士)란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4의2. “해기사 실습생”이란 해기사 면허를 취득할 목적으로 선박에 승선하여 실습하는 사람을 말한다.

4의3. “지정교육기관”이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선원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이들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해양경비안전교육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그 밖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5. “자동화선박”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운항설비를 갖춘 선박을 말한다.

6. “승무경력”이란 선박에 승선하여 복무한 경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6. 15.]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한국선박 및 그 선박소유자, 한국선박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선박 및 그 선박소유자,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이 법에서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을 공유하여 선박관리인을 둔 경우에는 선박관리인에게 적용하고, 선박임대차의 경우에는 선박차용인에게 적용한다.

③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개조되는 선박을 진수(進水) 시부터 인도 시까지 시운전하는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3조의2(국가 간 협력 및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기술의 국가 간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 중 개발도상국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1. 해기사 교육(실습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기관의 설립 지원
2. 해기사 교육과 관련한 행정·기술 요원의 교육 및 훈련 지원
3. 해기사 교육을 위한 장비·시설의 무상 지원
4. 해기사 교육을 위한 계획의 수립·개발 지원
5. 그 밖에 해기사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로서 해기사 교육과 관련된 지원

[전문개정 2011. 6. 15.]

제2장 해기사의 자격과 면허 등 <개정 2011. 6. 15.>

제4조(면허의 직종 및 등급) ①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직종과 등급별로 면허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종류, 항행구역 등에 따라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3. 24.>

1. 항해사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2. 기관사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2의2. 전자기관사

3. 통신사(전파통신급과 전파전자급으로 구분한다)

1급 통신사

2급 통신사

3급 통신사

4급 통신사

4. 운항사

1급 운항사

2급 운항사

3급 운항사

4급 운항사

5.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최대 이수중량(離水重量) 1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선박만 해당한다]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최대 이수중량 10톤 미만의 선박만 해당한다)

6. 소형선박 조종사

③ 직종별 면허의 상하 등급은 제2항 각 호의 등급별 순서에 따른다.

④ 운항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분야별로 해당 등급과 같은 등급의 항해사(한정면허의 경우에는 상선에 한정된 면허만 해당한다) 또는 기관사로 보며, 소형선박 조종사는 6급 항해

사 또는 6급 기관사의 하위등급의 해기사로 본다.

[전문개정 2011. 6. 15.]

제5조(면허의 요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해기사 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 발급일을 기준으로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허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2024. 1. 2.>

1.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 시험에 합격하고, 그 합격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
 2. 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 등 승무경력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경력이 있을 것
 3. 「선원법」에 따라 승무에 적당한 건강상태가 확인될 것
 4. 등급별 면허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할 것
 5. 통신사 면허의 경우에는 「전파법」 제70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이 있을 것
- ②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해기사 시험, 승무경력 및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 3. 24.>
-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면허를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4. 1. 2.>
- ④ 해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의 재발급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1. 면허증을 잃어버렸을 때
 2.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었을 때
 3.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전문개정 2011. 6. 15.]

제5조의2(자료의 보관 및 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발급·갱신·취소 등에 관한 자료를 유지·관리하고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 및 선박소유자가 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전문개정 2011. 6. 15.]

제5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의 유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6. 15.]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기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2. 1. 11.>

1. 18세 미만인 사람
 2.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수산업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전문개정 2011. 6. 15.]

제6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0. 18.]

제7조(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등) ① 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제2항에 따른 면허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개정 2014. 3. 24.>

②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면허의 효력을 계속 유지시키려는 사람 또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면허의 효력을 되살리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 갱신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면허 갱신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1. 면허 갱신 신청일 전부터 5년 이내에 선박직원으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1의2. 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하고 면허 갱신 신청일 직전 6개월 이내에 선박직원으로 3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에 승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1. 6. 15.]

[제목개정 2014. 3. 24.]

제8조(면허의 실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는 효력을 잃는다.

1. 상위등급 면허를 받았을 때의 그 동일 직종의 하위등급 면허. 다만,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한정된 상위등급 면허를 받은 경우 그 한정된 상위등급 면허로 한정되지 아니한 하위등급 면허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2. 「전파법」 제70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을 잃었을 때의 통신사 면허

[전문개정 2011. 6. 15.]

제9조(면허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견책(譴責)을 할 수 있

다. 다만, 해당 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18., 2022. 10. 18.>

1. 제14조를 위반하여 승무한 경우
2. 제15조를 위반하여 선박직원으로 승무할 때에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선박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3.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4. 선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비행(非行)이 있거나 인명(人命)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양환경보전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
5.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면허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 업무정지기간 중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우
7. 삭제 <2020. 2. 18.>
8. 「수상레저안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이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한정면허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10.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2. 선상 근무 중 다른 선원을 대상으로 「형법」 제250조, 제252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59조부터 제262조까지, 제289조부터 제292조까지,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부터 제305조까지, 제305조의2, 제305조의3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선상 근무 중 다른 선원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4조, 제14조의3, 제15조(제14조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해상교통안전법」 제4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2. 18., 2021. 4. 13., 2023. 7. 25.>

1.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가. 1차 위반: 업무정지 6개월
 - 나. 2차 위반 또는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면허취소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3.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면허취소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2021. 8. 17.>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허취소, 업무정지처분 또는 견책을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 내용을 해당 해기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 승무 중일 때에는 선박소유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1. 8. 17.>
- ⑥ 제5항에 따른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통지를 받은 해기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허증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정지기간이 끝나면 그 해기사에게 면허증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1. 8. 17.>
- ⑦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증을 제출받은 날부터 기산(起算)한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1. 8. 17.>
-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1. 8. 17.>
- ⑨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면허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신설 2022. 10. 18.>

[전문개정 2011. 6. 15.]

제10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1. 8. 17.>

[전문개정 2011. 6. 15.]

제10조의2(외국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한 특례) ①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다른 당사국이 발급한 해기사 자격을 인정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이하 “체약국”이라 한다)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한국선박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2025. 9. 16.>

② 「어선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이 발급한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다.<신설 2025. 9. 16.>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11조에 따른 승무기준에 맞는 자격을 가졌다고 인정하면 해당 체약국 또는 당사국의 해기사 면허증에 승무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선박 및 그 선박에서 수행할 수 있는 직무의 범위에서 선박직원으로서 승무할 수 있는 선박 및 그 선박에서의 직무 범위를 정하여 이를 인정(이하 “승무자격인정”이라 한다)하고, 승무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5. 9. 16.>

④ 승무자격인정의 신청 및 승무자격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9. 16.>

⑤ 승무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체약국 또는 당사국에서 해기사 자격을 잃은 때에는 그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개정 2025. 9. 16.>

⑥ 승무자격인정 및 승무자격증에 대하여는 제5조제4항, 제5조의2, 제6조,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해기사”는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면허”는 “승무자격인정”으로, “면허증”은 “승무자격증”으로 본다.<개정 2025. 9. 16.>

[전문개정 2011. 6. 15.]

제3장 선박직원 <개정 2011. 6. 15.>

제11조(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 ①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이하 “승무기준”이라 한다)에 맞는 해기사(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승무시켜야 한다.

② 선박직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3. 24.>

1. 선장은 선박의 운항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사망·질병 또는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선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동화선박에서는 항해를 전문으로 하는 1등 운항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그 밖의 선박에서는 1등 항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항해사는 갑판부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한다.
3. 기관장은 선박의 기계적 추진, 기계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사망·질병 또는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관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동화선박에서는 기관을 전문으로 하는 1등 운항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그 밖의 선박에서는 1등 기관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기관사는 기관부에서 기관당직을 수행한다.
- 4의2. 전자기관사는 항해장비 및 갑판기기를 포함한 선박의 전기·전자 및 자동제어 설비·시스템의 유지·점검·보수관리·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5. 통신장과 통신사는 선박통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 운항장과 운항사는 자동화선박에서 운항당직(항해·기관 및 전자장비 등에 대한 통합당직을 말한다)을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1. 6. 15.]

제12조(결원이 생긴 경우의 승무기준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그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1. 외국의 각 항(港) 간을 항행하는 선박으로서 선박직원에 결원이 생겼으나 보충하기 곤란한 경우

2. 본국항과 외국항 간을 항행하는 선박이 국외에서 선박직원에 결원이 생기고 본국항까지 항행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에 선박이 항행 중 선박직원에 결원이 생겼으나 보충하기 곤란한 경우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과 결원보충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박소유자에게 그 결원을 지체 없이 보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6. 15.]

[제목개정 2020. 2. 18.]

제13조(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 ① 선박소유자는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된 해기사를 그 직무의 선박직원으로 승무시킬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다른 선박에 예인(曳引)되어 항행하는 경우

2. 배가 선거(船渠)에 들어가거나 수리·계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항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의 수급(需給)상 부득이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범위에서 제11조에 따른 승무기준 중 등급을 완화하여 승무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6. 15.]

제14조(해기사의 승무 범위)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는 해기사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에 따른 승무기준에 따라 승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15.]

제15조(면허증 등의 비치) 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 승무할 때에는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선장은 이를 선박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15.]

제16조(해기사의 보수교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의 자질 향상, 기술 향상 및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기사에게 보수교육(補修教育)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전문개정 2011. 6. 15.]

제4장 보칙 <개정 2011. 6. 15.>

제17조(외국선박의 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영해 안에 있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거나 심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1.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 적합한 면허증 또는 증서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2.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정한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심사를 한 결과 그 선박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국선박의 선장에게 그 요건을 충족하는 선박직원을 승무시키도록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있는 해당 국가의 영사(해당 선박이 소속된 선적국가의 영사를 말하며, 영사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곳의 외교관 또는 해운당국을 말한다)에게 그 선장으로 하여금 적합한 선박직원을 승무시키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른 통보를 받은 그 외국선박의 선장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선박직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항행을 계속하는 것이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양환경보전에 장애가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국선박에 대하여 항행정지를 명하거나 그 항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위험과 장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항행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심사의 방법과 검사 및 심사를 하는 소속 공무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68조 및 제76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6. 15.]

제18조 삭제 <1999. 2. 8.>

제19조(증표의 제시) 제1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심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15.]

제20조 삭제 <2005. 3. 31.>

제21조(해기사 실습생의 승선 실습) ① 해기사 실습생의 승선 실습은 지정교육기관의 실습선에서 행하는 승선 실습과 상선 또는 어선에서 행하는 승선 실습(이하 “현장승선실습”이라 한

다)으로 구분한다.

- ② 선박소유자는 현장승선실습을 원하는 해기사 실습생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 따라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선박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승선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경비는 현장승선실습을 위탁하는 지정교육기관을 통하여 지원한다.

[전문개정 2020. 2. 18.]

- 제21조의2(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 등)** ① 제21조제2항에 따라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선박소유자는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여 해기사 실습생과 현장승선실습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해기사 실습생의 보호 또는 현장승선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에 참여할 수 있다.
 - ③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현장승선실습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소유자 및 해기사 실습생의 권리·의무
 2. 현장승선실습수당
 3. 현장승선실습 내용 및 방법
 4. 현장승선실습 기간 및 시간
 5. 현장승선실습결과의 평가
 6. 해기사 실습생의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 ⑤ 선박소유자가 현장승선실습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정한 선박직원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 따라 현장승선실습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18.]

- 제21조의3(지정교육기관의 현장승선실습 관리 등)** ①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해기사 실습생의 보호와 현장승선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제21조제2항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 따라 현장승선실습을 받을 해기사 실습생(이하 이 조에서 “현장승선실습생”이라 한다)을 추천하고 현장승선실습생의 안전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 체결에 참여한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기 전에 현장승선실습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현장승선실습생 등에게 설명회 등을 통하여 알리고, 현장승선실습생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의 현장승선실습 선박에서 선박의 환경, 실습 여건,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현장승선실습생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소유자의 선박 등에 대하여 현장승선실습생의 안전과 권리 보장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실태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 지정교

육기관 관계자의 현장승선실습 선박의 승선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1조제2항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승선실습생의 선발절차, 현장승선실습생의 건강상태 및 적성·인성 검사 결과 등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현장승선실습 사전교육 실시 시기, 기간 및 교육 내용 등에 관한 사항
3. 현장승선실습에 필요한 운영계획 수립, 학생 및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 설명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4. 실태점검 대상, 점검주기 및 항목 등에 관한 사항
5. 실태점검 결과의 제출 및 조치 방법에 관한 사항
6. 현장승선실습생 사고예방을 위한 통계 작성·관리, 현장승선실습생에 대한 지도·관리, 예방교육 실시 및 책임교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7. 지정교육기관과 선박소유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2. 10. 18.]

제22조(면허증 등의 부당사용 금지) ① 해기사 또는 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은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18.>

② 누구든지 해기사 또는 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의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의 대여 또는 부당한 사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0. 2. 18.>

[전문개정 2011. 6. 15.]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해기사 시험 관리나 제7조에 따른 면허 갱신 신청의 접수 등 그 절차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1.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해기사가 회원인 법인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6. 15.]

제24조(외국에서의 사무) ① 외국에서의 선박직원에 관한 사무는 대한민국 영사가 수행한다.

② 영사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외교부장관을 통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6. 15.]

제25조(준용규정) ① 한국선박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차용(借用)한 외국선박의 선박직원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②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해기사가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14조, 제15조 및 제22조와 각 해당 조문에 해당하는 벌칙 또는 과태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6. 15.]

제25조의2(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이 법에 따른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 29.>

[전문개정 2011. 6. 15.]

제26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의 발급·갱신 또는 그 밖의 증명 등을 신청하거나 해기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6. 15.]

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이라 하더라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제2조제1호가목2)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평가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6. 15.]

제5장 벌칙 <개정 2011. 6. 15.>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3. 27., 2020. 2. 18., 2025. 9. 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면허 또는 제10조의2에 따른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2. 제4조에 따른 면허 또는 제10조의2에 따른 승무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사람과 그를 승무시킨 자. 다만, 승무 중에 면허 또는 승무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제외한다.
3. 승무경력을 거짓으로 증명하여 준 자
4. 제9조(제10조의2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중에 있는 사람을 선박직원으로 선박에 승무시킨 자
5.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기사(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를 승무시킨 자
6. 제12조제3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7.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사람

8.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의 대여 또는 부당한 사용을 알선한 사람
[전문개정 2011. 6. 15.]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9. 16.>

1. 제9조(제10조의2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사람
 2. 제14조를 위반한 사람
- [전문개정 2011. 6. 15.]

제29조(벌칙)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기사 실습생의 현장승선실습을 거부하거나 현장승선 실습 운영지침을 따르지 아니한 선박소유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2. 18.]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제4호·제5호 또는 제29조제1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6. 15.]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2. 18.>

1.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현장승선실습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현장승선실습 계약을 체결할 때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2.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승선실습 계약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2. 18.>

1. 선박직원의 면허 또는 승무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이 승무 중에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박직원을 계속 승무시킨 자
2.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심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2. 18.>

1.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를 위반하여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전문개정 2011. 6. 15.]

부칙 <제3715호, 1983. 12. 31.>**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면허의 직종별 등급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면허(이하 “구면허”라 한다)를 받은 자는 다음 표와 같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이하 “신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면 허 | | | | | 신 면 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갑 종 선 | | | | | 장 1 급 항 해 사 | | | | |
| 갑 종 1 등 항 해 사 | | | | | 2 급 항 해 사 | | | | |
| 갑 종 2 등 항 해 사 | | | | | | | | | |
| | | | | | 3 급 항 해 사 | | | | |
| 을 종 선 | | | | | 장 | | | | |
| 을 종 1 등 항 해 사 | | | | | 4 급 항 해 사 | | | | |
| 을 종 2 등 항 해 사 | | | | | 5 급 항 해 사 | | | | |
| 병 종 항 해 사 | | | | | 6 급 항 해 사 | | | | |
| 갑 종 기 관 장 | | | | | 1 급 기 관 사 | | | | |
| 갑 종 1 등 기 관 사 | | | | | 2 급 기 관 사 | | | | |
| 갑 종 2 등 기 관 사 | | | | | | | | | |
| | | | | | 3 급 기 관 사 | | | | |
| 을 종 기 관 장 | | | | | | | | | |
| 을 종 1 등 기 관 사 | | | | | 4 급 기 관 사 | | | | |
| 을 종 2 등 기 관 사 | | | | | 5 급 기 관 사 | | | | |
| 병 종 기 관 사 | | | | | 6 급 기 관 사 | | | | |
| 갑 종 선 박 통 신 사 | | | | | 1 급 통 신 사 | | | | |
| 을 종 선 박 통 신 사 | | | | | 2 급 통 신 사 | | | | |
| 병 종 선 박 통 신 사 | | | | | 3 급 통 신 사 | | | | |
| 소 형 선 박 항 해 사 | | | | | | | | | |
| | | | | | 소 형 선 박 조 종 사 | | | | |
| 소 형 선 박 기 관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구면허장을 가진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면허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 (해기사시험 합격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신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면허에 상응하는 신면허를 받을 수 있다.

제4조 (면허의 취소등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면허의 취소, 업무의 정지, 견책등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구면허의 유효기간의 기산일) 구면허에 대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이를 기산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선박통신사”를 “통신장 및 통신사”로 한다.

②해난심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9조제2항제1호중 “갑종선장 또는 갑종기관장”을 “1급항해사 또는 1급기관사”로 한다.
2. 제46조, 제80조 및 제82조중 “해기사면허장”을 “해기사면허증”으로 한다.
3. 제81조 및 제82조의 제목 및 본문중 “면허장”을 “면허증 또는 면허장”으로 한다.

부칙 <제4256호, 1990. 8. 1.>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해기사시험 합격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해기사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 ③(통신사면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통신사면허는 제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신급통신사면허로 본다.

부칙 <제4441호, 1991. 12. 14.> (전파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⑦생략

⑧선박직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중 “전파관리법”을 “전파관계법령”으로 한다.

⑨생략

부칙 <제4925호,1995. 1. 5.> (항만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선박직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이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5367호,1997. 8. 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기사의 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3급 통신사(한정)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4급 통신사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며, 3급 통신사(한정)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법에 의한 4급 통신사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통신사 면허중 전신급 통신사 면허는 전파통신급 통신사 면허로 보며, 전 자급 통신사 면허는 전파전자급 통신사 면허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5급 운항사 면허를 받은 자는 5급 항해사 또는 5급 기관사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453호,1997. 12. 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 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809호,1999. 2. 5.>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선박직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중 “해난사고에 대하여 해난심판원이 ”를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로 한다.

제27조제3호 및 제28조제2호중 “해난심판법 ”을 각각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로 한다.

⑪내지1& 생략

부칙 <제5923호,1999. 2. 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397호,2001. 1. 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해기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해기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480호,2005. 3.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납시어선 및 유·도선 등의 선박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또는 이 법 시행 후 3년까지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납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된 어선 또는 영업구역이 바다인 유·도선에 승무하고 있는 선박직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이 법에 의한 해기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선박에 승무할 수 있다.

부칙 <제7789호,2005. 12. 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8222호,2007. 1. 3.>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해기사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산업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에게도 제6조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7. 4. 11.>

부칙 <제8377호, 2007. 4. 11.> (수산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5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생략>...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법률 제8222호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5호 및 부칙 제2항 중 “「수산업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각각 “「수산업법」 제6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⑭내지2\$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8379호, 2007. 4. 11.> (항만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중 “「항만법」 제70조의3”을 “「항만법」 제77조”로 한다.

⑥내지 ⑪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 、<생략> 、 、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45> 까지 생략

<646>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제1호, 제5조의2, 제9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

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5항, 제10조,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6조, 제17조제2항 전단 및 제3항·제4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24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4항, 제7조제2항 및 제3항제2호, 제9조제3항 전단 및 제6항, 제13조제1항 제3호, 제16조, 제23조제3항 및 제26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2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4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626호, 2009. 4. 22.> (수산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수산업법」 제62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71조제1항”으로 한다.

⑧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9773호, 2009. 6. 9.> (항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중 “「항만법」 제77조”를 “「항만법」 제89조”로 한다.

⑭ 부터 28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9873호,2009. 12. 29.> (해상교통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요청이 있는 때

② 생략

부칙 <제9874호,2009. 12. 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가목(4) 및 제4조제2항제4호의 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458호,2011. 3. 9.>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2) 중 “ 「낙시어선업법」 제4조의 규정 ”을 “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 ”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0798호,2011. 6. 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01호,2011. 6. 15.> (해사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중 “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의2 ”를 “ 「해사안전법」 제42조 ”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9>까지 생략

<600>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의2, 제5조의3제1항,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0조, 제10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24조제2항, 제26조의2 및 제31조제3항 중 “ 국토해양부장관 ”을 각각 “ 해양수산부장관 ”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9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3조제1항제3호, 제16조, 제23조제3항 및 제26조 중 “ 국토해양부령 ”을 각각 “ 해양수산부령 ”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 외교통상부장관 ”을 “ 외교부장관 ”으로 한다.

<60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538호, 2014.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운전 선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시운전을 하기 위하여 진수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기사 면허 갱신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기사 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기관사”를 “기관사, 전자기관사”로 한다.

②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을 포함한다) 또는 제2호”를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과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하고, 시운전선박(국내 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개조하여 진수 후 인도 전까지 시운전하는 선박을 말한다) 및 이동식 시추선·수상호텔 등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2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41조의2제1호 및 제2호 중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외국선박”을 각각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으로 한다.

제105조제1호 및 제2호 중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선박”을 각각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을 포함한다)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선박”을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으로 한다.

제110조제3항제15호의2 및 제15호의3 중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을 각각 “총톤수 5톤 미만 선박(한국선박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2844호, 2014. 11. 1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0>까지 생략

<231>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32>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267호, 2015. 3.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1>까지 생략

<242>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4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902호, 2020. 1. 29.> (항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 & 까지 생략

2*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중 “「항만법」 제89조”를 “「항만법」 제26조”로 한다.

2(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7029호, 2020. 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1조, 제21조의2, 제29조 및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18059호, 2021. 4.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428호, 2021. 8.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755호, 2022. 1. 11.> (수산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 「수산업법」 제71조제1항 ” 을 “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 으로 한다.

⑮부터 3% 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 <제19009호, 2022. 10.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19573호, 2023. 7. 25.> (해상교통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 「해사안전법」 ” 을 “ 「해상교통안전법」 ” 으로 한다.

⑪부터 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9907호,2024. 1. 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53호,2025. 9. 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051 - 773 - 5741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 25., 2015. 3. 24.>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 1. 29., 1994. 8. 23., 1994. 12. 23., 1996. 8. 8., 1998. 2. 24., 1998. 9. 12., 2001. 8. 10., 2005. 9. 30., 2007. 5. 25., 2007. 9. 28., 2008. 2. 29., 2012. 2. 22., 2013. 3. 23., 2015. 3. 24., 2016. 2. 29., 2017. 7. 11., 2023. 10. 17.>

1. “연안수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해역을 말한다.

가.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평수구역

나.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연해구역

다. 제주도 남단 20마일의 지점으로부터 북위 29도40분과 동경 122도의 교차점에 이르는 선 이북의 해역

2. “원양수역”이라 함은 모든 해역을 말한다.

2의2. “무제한수역”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해외수역을 말한다.

2의3. “제한수역”이란 제2호의2에 따른 무제한수역 외의 수역을 말한다.

3. “상선”이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선이 아닌 선박을 말한다.

4. “어선”이란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국내항과 외국항간을 또는 외국항간을 운항하면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5. “소형선박”이라 함은 총톤수 25톤미만의 선박을 말한다.

6. “함정”이라 함은 군용 선박 및 경찰용 선박을 말한다.

7. 삭제<2020. 8. 11.>

8. “졸업예정자”라 함은 지정교육기관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의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한다.

9. “이수예정자”라 함은 지정교육기관에 설치한 전교육과정·학년별 또는 과정별 교육기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10. “주기관(主機關) 추진력”이란 선박의 모든 주 기관의 총 최대연속정격출력을 말한다.

제3조(선박의 범위) 「선박직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1. 8. 10., 2012. 2. 22., 2015. 3. 24., 2023. 10. 17.>

1.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

2. 계류된 선박 중 총톤수 500톤 미만인 선박

제3조의2(자동화선박의 설비 등) ①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운항설비”란 자동화선박의 종류에 따른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2. 2. 22.>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선박의 설비를 갖추었거나 그 설비가 변경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자동화선박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4. 12. 23., 1996. 8. 8., 1997. 5. 24.,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화선박 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당해 자동화선박의 설비를 확인한 후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설비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동화선박의 종류별 인정서를 교부한다.<개정 1994. 12. 23., 1996. 8. 8., 1997. 5. 24.,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④선박소유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자동화선박의 설비가 기준에 미달되게 된 때에는 이를 인정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97. 5. 24., 2008. 2. 29., 2015. 1. 6.>

[본조신설 1991. 1. 29.]

제4조(한정면허) ①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한정면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 2. 14., 2013. 4. 22., 2015. 3. 24., 2017. 7. 11., 2023. 10. 17., 2024. 12. 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기사면허(이하 “면허”라 한다)에 대하여 상선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상선면허 및 어선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어선면허가. 1급부터 6급까지의 항해사면허. 다만, 항해선(「선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해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승무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5급·6급의 기관사면허(제16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취득하는 면허로 한정한다)

다. 6급의 기관사면허(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무경력으로 취득하는 기관사면허로 한정한다)

1) 주기관 추진력이 500킬로와트 이상인 선박에서 1년 이상 승선한 승무경력

2) 주기관 추진력이 150킬로와트 이상 500킬로와트 미만인 선박에서 2년 이상 승선한 승무경력

2. 5급·6급의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에 대하여 해저자원굴착선·해양자원탐사선·준설선 등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선박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특수선박면허

3. 5급·6급의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에 대하여 호수·하천 또는 국제통신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국내항 등 특정 수역만을 운항하는 선박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특정수역면허

3의2. 6급의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에 대하여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총톤수 55톤 미만의 모터보트 또는 동력요트에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모터보트·동력요트면허

3의3. 전자기관사면허에 대하여 이동식 시추선에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이동식 시추선면허

4. 소형선박 조종사면허(「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소지자에게 교부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요트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한정하는 요트면허 및 요트를 제외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한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

5.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에 대하여 표면효과(WIG: Wing In Ground Effect)가 발생하는 높이(수면비행선박 주 날개의 종방향 평균폭을 말한다) 이하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표면효과전용선면허

6.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에 대하여 자가운전 등 비사업용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비사업용조종사면허

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급받은 상선면허 또는 어선면허는 해당 한정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해당 선박에서 실제 승무하는 1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선박의 종류별 승무 제한이 없는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고 해당 한정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3. 10. 17.>

1.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상선면허 및 어선면허

2. 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어선면허

[전문개정 2007. 5. 25.]

제4조의2(운항사면허의 전문분야)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항사면허의 전문분야는 항해 전문과 기관전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1. 8. 10.]

제5조(면허취득교육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 2. 24., 2001. 8. 10., 2007. 5. 25., 2011. 2. 14., 2015. 3. 24.>

1. 지정교육기관에서 해당 직종의 해기사양성 교과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신규로 다음 각 목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다만, 받고자 하는 면허의 바로 아래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3급 항해사부터 6급 항해사까지

나. 3급 기관사부터 6급 기관사까지

다. 1급 통신사부터 4급 통신사까지

2. 제1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자

3. 제13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 6급 항해사면허, 6급 기관사면허 또는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자

4. 제14조제1항에 따라 면접시험으로 면허를 받으려는 자

5.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면허를 받으려는 자

6.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과정·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 8. 10., 2008. 2. 29., 2013. 3. 23.>

③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가 면허를 받기 전에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한 기간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 8. 23., 2007. 5. 25., 2016. 2. 29.>

제5조의2(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종 및 등급별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외국선박의 승무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1의3과 같다. <개정 2007. 5. 25.>
[전문개정 1998. 2. 24.]

제6조 삭제 <1998. 2. 24.>

제7조(승무경력기간의 계산) ①승무경력기간은 승선한 날로부터 하선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승선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제1항의 경우 1월에 미달되는 승무경력기간은 합산하여 30일을 1월로 하고, 1년에 미달되는 승무경력기간은 합산하여 12월을 1년으로 한다.

제8조(상이한 승무경력기간의 합산등) ①승무경력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른 직무로 승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1의3에 의한 직무별 기간의 비례에 따라 이를 환산하여 서로 합산할 수 있다. <개정 1991. 1. 29.>

② 삭제<2001. 8. 10.>

③「전파법 시행령」 제29조제4호에 따른 해안국에서 무선통신에 관한 업무를 담당(실습을 포함한다)한 경력은 3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표1의3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직무별 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신설 1991. 1. 29., 1992. 6. 30., 2001. 8. 10., 2005. 9. 30., 2012. 2. 22.>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 ①승무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개정 1998. 2. 24., 1998. 9. 12., 2001. 8. 10., 2004. 1. 29., 2005. 9. 30., 2008. 2. 29., 2015. 1. 6., 2015. 3. 24., 2017. 7. 11., 2020. 8. 11.>

1. 선원수첩

2. 삭제<2005. 9. 30.>

3. 선원수첩을 가진 자가 이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선원수첩을 교부한 지방해양수산청장,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라 한다)의 원장 또는 「선원법」 제142조에 따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이사장이 증명하는 서류

4. 삭제<2005. 9. 30.>

5. 삭제<2005. 9. 30.>

②함정 및 그 밖의 선박으로서 선원수첩을 가지지 아니하고 승무할 수 있는 선박에 승무한 경력의 증명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1. 1. 29., 1996. 8. 8., 2008. 2. 29., 2013. 3. 23.>

③제2항에 따라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함정 및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개조되는 선박으로서 진수(進水) 시부터 인도 시까지 시운전하는 선박(이하 “시운전선박”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호·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을 제외한다.<개정 2011. 2. 14., 2015. 3. 24., 2016. 2. 29.>

1. 선박번호·선종 및 선명
2. 총톤수, 배수톤수 또는 최대 이수중량
3. 기관의 종류 및 주기관 추진력
4. 직무 및 승무기간
5. 무선통신설비의 유무
6. 선박의 용도 및 항행구역
7. 선박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선박의 국적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교육기관의 해기사양성 교과과정 이수자(이수에 정자를 포함한다)로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승무경력을 증명하여야 한다.<신설 2005. 9. 30., 2007. 5. 25., 2008. 2. 29., 2013. 3. 23.>

1. 제1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간 및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은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가 증명하는 서류
2. 신규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의 승무경력(승선실습을 포함하며, 항해분야 및 운항분야는 1년 이상, 기관분야는 6월 이상의 경력에 한한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증명하는 훈련기록부. 다만, 하위 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자가 상위 등급의 면허를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훈련기록부의 제출을 면제한다.
 - 가. 3급 항해사 또는 4급 항해사(어선면허를 제외한다)
 - 나. 3급 기관사 또는 4급 기관사
 - 다. 3급 운항사 또는 4급 운항사

⑤지정교육기관의 상선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제4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상선의 훈련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5. 9. 30.>

⑥ 삭제<2015. 3. 24.>

제10조(시험의 시행) 시험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시험·임시시험 및 상시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1994. 12. 23., 1996. 8. 8., 2005. 9. 30., 2008. 2. 29., 2013. 3. 23.>

- 제11조(시험과목)** ①시험과목은 별표2와 같이 하고, 과목 내용별 출제비율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6. 8. 8., 2008. 2. 29., 2013. 3. 23.>
- ②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한정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승무하고자 하는 선박의 특성에 적합한 다른 과목으로 변경하거나 일부과목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4. 8. 23., 1996. 8. 8., 1998. 2. 24., 2008. 2. 29., 2013. 3. 23.>
- ③ 삭제 <1998. 2. 24.>
- ④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받은 자가 「국가기술자격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면제를 받는 과목과 같은 필기시험의 해당 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6. 8. 8., 2005. 9. 30., 2007. 5. 25., 2008. 2. 29., 2013. 3. 23.>
-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개정 1996. 8. 8., 2008. 2. 29., 2013. 3. 23.>
- [전문개정 1991. 1. 29.]

- 제12조(시험방법)** ①항해사·기관사 및 운항사의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1. 1. 29.>
- ②통신사의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한다.
- ③소형선박조종사의 시험은 필기시험·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으로 한다.<개정 1998. 2. 24.>
- ④ 전자기관사 및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의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신설 2011. 2. 14., 2015. 3. 24.>
- ⑤제1항에 따른 면접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필기시험이 면제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 2. 14.>
-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6. 8. 8., 1998. 2. 24., 2007. 5. 25., 2008. 2. 29., 2011. 2. 14., 2013. 3. 23.>

- 제13조(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면제)** ①2급 항해사·2급 기관사 또는 2급 운항사 이상의 시험중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된 자가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4년 이내에 같은 직종, 같은 등급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1998. 2. 24.>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별표1의3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 2배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고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1등급 상위면허의 시험중 필기시험을 면제한다.<개정 1994. 12. 23., 1996. 8. 8., 1998. 2. 24., 2008. 2. 29., 2013. 3. 23.>
1. 3급 항해사 이하의 면허를 가진 자

2. 3급 기관사 이하의 면허를 가진 자

3. 3급 운항사 이하의 면허를 가진 자

③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기준에 미달된 자로서 필기 시험과목중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이 2과목 이상인 자가 2년 내에 같은 직종, 같은 등급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이미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7. 5. 25., 2008. 2. 29., 2013. 3. 23.>

④6급 항해사·6급 기관사 또는 소형선박 조종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별표1의3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의 2배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8. 2. 24., 2005. 9. 30., 2007. 5. 25., 2008. 2. 29., 2013. 3. 23.>

⑤다음 각호의 1의 시험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면접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어에 의한 의사소통능력의 평가를 위한 면접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1. 8. 10., 2008. 2. 29., 2013. 3. 23.>

1. 3급 항해사 이하의 시험

2. 3급 기관사 이하의 시험

3. 3급 운항사 이하의 시험

⑥항해사 또는 운항사면허를 가지고 전파전자급 또는 전파통신급 4급 통신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면제한다.<개정 2001. 8. 10.,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1991. 1. 29.]

제14조(해기사이었던 자 또는 해기사에 대한 시험의 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효력이 상실되거나 취소된 면허와 같은 직종, 같은 등급의 면허를 위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접시험만을 실시한다. <개정 2005. 9. 30., 2007. 5. 25.>

1. 법률 제3715호 「선박직원법개정법률」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면허의 갱신을 하지 아니하여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자

2.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뺀다)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1의3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해사시험에 응시하는 자중 동 규정에 의한 최소 승무경력 2배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기시험 과목중 일부 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1998. 2. 24.]

제14조의2(해기사에 대한 승무경력의 특례) ① 삭제 <2001. 8. 10.>

②통신사면허를 받고 무선설비를 갖춘 선박에서 3년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통신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의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8. 9. 12.>

1. 1급 통신사 및 2급 통신사가 2급 이하의 항해사시험에 합격한 경우
2. 3급 통신사가 3급 이하의 항해사시험에 합격한 경우

[본조신설 1998. 2. 24.]

제14조의3(모터보트·동력요트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 제4조제1항제4호의 요트면허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를 4년 이상 보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제외한다)한 사람은 같은 항 제3호의2의 모터보트·동력요트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 4. 22.]

[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4로 이동 <2013. 4. 22.>]

제14조의4(소형선박 조종사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 제12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한 자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소지한 자는 별표 1의3 제4호에 따른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2. 14.>

[본조신설 2007. 5. 25.]

[제1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4는 제14조의5로 이동 <2013. 4. 22.>]

제14조의5(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와 관련된 승무경력의 특례) ① 별표 1의3 제6호에도 불구하고 6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항공안전법」 제35조제1호에 따른 운송용 조종사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사업용 조종사로서 사업용 조종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조종 가능한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를 500시간 이상 비행한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3. 29.>

② 별표 1의3 제6호에도 불구하고 6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항공안전법」 제35조제1호에 따른 운송용 조종사,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사업용 조종사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자가용 조종사로서 자가용 조종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조종 가능한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를 400시간 이상 비행한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7. 3.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경력의 인정을 위한 비행경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비행경력증명서로 증명되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2. 14.]

[제14조의4에서 이동 <2013. 4. 22.>]

제15조(한정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특례) ①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상선면허를 받은 자는 상위등급의 상선면허에 한하여 이를 받을 수 있으며, 어선면허를 받은 자는 상위등급의 어선면허에 한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7. 5. 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선면허 또는 어선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이미 받은 면허의 등급과 같거나 그보다 낮은 등급의 어선면허 또는 상선면허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5. 3. 24.>

1. 받으려는 면허를 위한 시험에 합격할 것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3의 규정에 의한 당해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중 전문과목 외의 과목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1998. 2. 24.]

제16조(지정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자 등에 대한 특례) ①지정교육기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수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별표 1의3에 따른 승무경력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교육과정중의 실습기간을 뺀 교육기간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선박의 운항, 기관의 운전, 전자기관의 운전 또는 무선통신의 담당의 직무로 승무한 경력에 산입한다. <개정 1998. 2. 24., 1998. 9. 12., 2007. 5. 25., 2008. 2. 29., 2013. 3. 23., 2015. 3. 24., 2017. 7. 11., 2023. 10. 17.>

1. 지정교육기관중 대학·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지정 받은 학과[「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을 비준한 외국의 지정교육기관의 해당 학과를 포함한다]를 2년 이상 이수한 자로서 상선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상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2년, 어선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어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2년
2. 지정교육기관 외의 대학·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포함한다)를 졸업하고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3급 또는 4급의 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 상선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상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2년, 어선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어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2년
3. 별표1의3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교육기간
4. 삭제<2023. 10. 17.>

② 지정교육기관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중 실습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별표 1의3에 따른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습기간을 합산하여 해당 승무경력기간에 산입한다.<개정 2023. 10. 17.>

1. 별표 1의3에 따라 받으려는 면허에 요구되는 승무경력이 인정되는 규모 이상의 선박(실습선을 포함한다)에서 10일 이상 계속하여 실습을 한 경우: 해당 실습기간
2. 기관 운전에 관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조선소 등의 육상실습장에서 계속하여 실습을 한 경우: 6개월 이내의 실습기간
3.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선박모의조종장비 또는 선박기관모의조종장비를 이용하여 실습을 한 경우: 2개월 이내의 실습기간

③지정교육기관중 대학·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지정받은 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정교육기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의 승무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1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동일직종의 면허(운항사과정의 경우에는 전문분야별로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를 포함한다)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6. 8. 8., 2001. 8. 10., 2008. 2. 29., 2013. 3. 23., 2015. 3. 24.>

1.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는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전자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는 4급 항해사, 4급 기관사, 전자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
3. 1년 이상의 통신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4급 항해사·4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

④지정교육기관중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기품질평가 결과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대학·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지정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및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선실습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8. 2. 24., 2007. 5. 25., 2008. 2. 29., 2013. 3. 23.>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교육기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5급 이하의 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별표 1의3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과 같은 직종 5급 이하의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면허취득 및 시험응시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신설 2005. 9. 30., 2007. 5. 25., 2008. 2. 29., 2013. 3. 23., 2017. 7. 11., 2023. 10. 17.>

1.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 「평생교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교육기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5급의 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별표 1의3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과 같은 직종 5급의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면허취득 및 시험응시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신설 2017. 7. 11., 2023. 10. 17.>

1. 해양경찰교육원
2. 해군교육사령부

⑦ 지정교육기관 중 제16조의2에 따른 해기품질평가 결과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대학·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지정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가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선실습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과 같은 직종 5급의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면허취득을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신설 2007. 5. 25., 2008. 2. 29., 2013. 3. 23., 2017. 7. 11.>

[전문개정 1991. 1. 29.]

제16조의2(지정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해기사양성교육·시험 또는 면허관리에 관한 품질평가(이하 “해기품질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25., 2008. 2. 29., 2013. 3. 23., 2016. 2. 29.>

1. 지정교육기관

2. 제24조에 따라 시험 또는 면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기품질평가는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기품질평가의 실시방법, 실시결과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본조신설 1998. 2. 24.]

제16조의3(면허취득교육 이수자 등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1의3에 따른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호에 따른 교육과정의 이수기간을 그 교육과정과 같은 직무로 승무한 경력에 산입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4호 및 이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면허취득교육과정을 이수(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교육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한 사람

2. 법 제16조에 따라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해기사

[본조신설 2023. 10. 17.]

제17조(외국의 해기사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특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국제해사기구가 국제협약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한 국가에서 국제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발급된 외국의 해기사자격증을 소지한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해기사”라 한다)가 동일한 직종·등급으로 인정하는 국내의 승무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를 위한 시험 및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 9. 30., 2008. 2. 29., 2013. 3. 23., 2016. 2. 29.>

②제1항의 경우 외국인해기사는 별표 1의3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며, 해기사면허증 발급국의 건강검진증명서(「선원법」 제87조에 따른 건강진단서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9. 30., 2012. 2. 22.>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무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해기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무자격증의 승무직종 및 승무등급 지정을 신청(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30., 2008. 2. 29., 2013. 3. 23., 2015. 3. 24.>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무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서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해사법규에 관한 지식을 갖추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30., 2008. 2. 29.,

2013. 3. 23.>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을 별도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05. 9. 30., 2008. 2. 29., 2013. 3. 23.>

⑥제1항에 따른 승무자격증의 교부 및 갱신에 관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시험의 면제에 관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05. 9. 30., 2008. 2. 29., 2013. 3. 23., 2016. 2. 29.>

[전문개정 2001. 8. 10.]

[제목개정 2005. 9. 30.]

제18조(시험의 합격기준) ①필기시험은 1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항해사의 법규과목은 6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1991. 1. 29., 1998. 2. 24.>

②제11조제2항·제4항, 제13조제3항·제4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라도 면제받지 아니한 시험과목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91. 1. 29., 1998. 2. 24., 2007. 5. 25.>

③면접시험의 합격기준은 위원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개정 1998. 2. 24., 2007. 5. 25.>

④ 실기시험의 합격기준은 시험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신설 2007. 5. 25.>

제19조(부정한 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2.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
3.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5.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6. 시험장 내외의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7.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르는 행위
8.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9.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10. 응시자가 시험시간 중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Player),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
11.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 부정한 행위의 유형, 내용,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6. 2. 29.>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시험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험행위를 중지시키고, 부정행위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여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정행위자가 확인 또는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감독하는 사람이 작성한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합격결정 취소 및 응시자격 정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해당 응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2. 22.]

제20조(면허의 갱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2. 29., 2023. 10. 17.>

1. 면허 갱신 신청일 전일부터 5년 이내에 외국선박 또는 함정에서 선박직원 또는 그 면허에 적합한 직무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2. 면허 갱신 신청일 전일부터 5년 이내에 선박(함정을 포함한다)에서 선박직원이 아닌 자격으로 2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면허 갱신 신청일 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선박(어선을 제외한다) 또는 함정에서 선박직원 또는 그 면허에 적합한 직무로 3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면허 갱신 신청일을 기준으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 가. 「도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
 - 나.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또는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
 - 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심판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수석조사관 또는 조사관
 - 라. 「해운법」 제22조에 따른 운항관리자
 - 마.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
 - 바. 지정교육기관에서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는 전임교원
-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이 종사하는 직무와 유사한 직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5. 3. 24.]

제21조 삭제 <1997. 12. 31.>

제22조(승무기준)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별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은 별표3과 같다. 다만,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선박중 「선원법」 제119조에 따른 취업규칙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지 아니한 선박에 대하여는 별표3제1호 내지 제3호의 승무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7. 5. 25., 2012. 2. 22.>

1. 정박중 선박설비의 점검·정비 및 하역 등에 대한 육상지원체제에 관한 사항

2. 자동화선박의 승무자격이 있는 운항사의 확보에 관한 사항

②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을 말한다)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연안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중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상선을 포함한다)에서 선장·1등 항해사·기관장·1등 기관사·운항장·1등 운항사 또는 통신장의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이 있고,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1994. 8. 23., 1994. 12. 23., 1996. 8. 8., 1998. 2. 24., 2008. 2. 29., 2013. 3. 23., 2015. 3. 24.>

③연안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을 말한다)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서 선장·기관장·운항장 또는 통신장의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1994. 12. 23., 1996. 8. 8., 2008. 2. 29., 2013. 3. 23., 2015. 3. 24.>

④항해사 또는 기관사가 운항사 면허를 받고 최초로 운항사의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1998. 2. 24., 2008. 2. 29., 2013. 3. 23.>

⑤운항사가 자동화선박 외의 선박에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 승무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항사가 부여받은 전문분야와 동일한 직종의 직무로 승무하여야 한다.<개정 1998. 2. 24.>

⑥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객선 및 「선원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적재선박(위험물 적재부선과 예선이 결합하여 운항하는 위험물 운반선을 포함한다)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기준보다 강화하거나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 8. 8., 2007. 5. 25., 2008. 2. 29., 2013. 3. 23.>

⑦「선박안전법」 제29조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선박중 다음 각 호의 선박 외의 선박에서 선장·항해사·운항장 또는 운항사로 승무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직무와 관련한 면허 외에 4급 이상의 통신사면허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는 전파전자급의 통신사면허를 갖추어야 하며, 그 밖의 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는 전파통신급 또는 전파전자급의 통신사면허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8. 2. 24., 2001. 8. 10., 2007. 5. 25., 2007. 9. 28., 2012. 2. 22.>

1. 「전파법 시행령」 제116조에 따라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있는 선박

2. 어선 및 소형선박

⑧ 기관사 또는 운항사(기관전문 운항사에 한정한다)가 전자기관사 면허를 받고 최초로 전자기관사의 직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15. 3. 24.>

[전문개정 1991. 1. 29.]

제22조의2(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의 전파전자급 통신사 승무 기준)

①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의 전파전자급 통신사의 승무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1998. 2. 24.>

② 제1항 및 별표 3의2에도 불구하고 선장·항해사·기관장·기관사·운항장 또는 운항사는 무선설비가 2중으로 설치되고 육상정비체제가 갖추어진 선박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신장 또는 통신사의 직무를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통신장 또는 통신사의 직무를 겸임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4., 2017. 7. 11.>

1. 통신장: 선장(어선의 선장에 한정한다)·항해사·운항장 또는 운항사 중에서 전파전자급 3급 통신사 이상의 면허를 받은 사람
2. 통신사: 선장·항해사·기관장·기관사·운항장 또는 운항사 중에서 통신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승무자격을 갖춘 사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겸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나머지 선박직원중 최소한 2인 이상은 전파전자급 4급 통신사 이상의 면허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8. 2. 24.>

[본조신설 1994. 8. 23.]

제23조(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 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기준을 완화하여 승무를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 8. 8., 2008. 2. 29., 2013. 3. 23.>

1. 국민경제 또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자를 긴급히 수송하는 경우로서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긴급히 도서민을 수송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기사의 수급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기준의 완화에 관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승무하고자 하는 자의 면허의 등급 및 승무경력등을 참작하여 선박항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장 또는 기관장에 대한 승무기준 완화에 관한 허가는 불가항력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1996. 8. 8., 1998. 2. 24., 2008. 2. 29., 2013. 3. 23.>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 1. 29., 1996. 8. 8., 1997. 5. 24., 1998. 2. 24., 2001. 8. 10., 2007. 5. 25., 2008. 2. 29., 2012. 2. 22., 2013. 3. 23., 2015. 1. 6., 2020. 8. 11.>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2. 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기사면허증의 발급·재발급 및 기재사항의 변경
- 2의2.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시험정지, 합격결정 취소 및 응시자격 정지
3.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갱신
4.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면허증의 수령 및 반환
5.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업무의 정지 및 견책

6.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6의2.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승무자격증의 발급

6의3.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결원사실과 결원보충계획의 접수 및 결원보충명령

7. 법 제13조에 따른 승무기준의 완화에 관한 허가

8.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선박의 감독

9. 삭제<1999. 4. 7.>

10.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1. 삭제<2012. 2. 22.>

② 삭제<1998. 9. 12.>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험의 관리에 관한 권한을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장에게 위탁한다.<개정 1998. 2. 24., 1998. 9. 12., 2008. 2. 29., 2013. 3. 23., 2016. 2. 29.>

④ 삭제<1998. 2. 24.>

제2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7.>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해기사 면허의 요건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해기사 면허증의 발급,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면허증의 재발급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승무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에 따른 해기사 보수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

5. 제5조 및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면허취득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무

6. 제10조에 따른 시험의 시행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 3. 27.]

제25조(외국에 있어서의 사무) 영사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행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그 내용을 외교부장관을 통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 8. 8., 2007. 5. 25., 2008. 2. 29., 2013. 3. 23.>

제25조의2 삭제 <2020. 3. 3.>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0. 8. 11.>

[전문개정 2012. 2. 22.]

부칙 <제11472호, 1984. 7. 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허의 직종별 등급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다음표의 구면허장을 가진 자는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표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같은 표의 신면허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취항하고 있는 선박(외국선박을 포함한다)에 승무하고 있는 자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해운항만청장이 인정하는 자는 1987년 3월 31일까지 신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 구 면 허 | | 교 부 기 간 | |
|------------------|---------------|---------|--|
| 갑종선장, 갑종1등항해사, | 1984년 8월 1일부터 | | |
| 갑종2등항해사, 을종선장, | 1985년12월31일까지 | | |
| 갑종기관장, 갑종1등기관사, | | | |
| 갑종2등기관사, 을종기관장, | | | |
| 갑종선박통신사, 을종선박통 | | | |
| 신사 | | | |
| 을종1등항해사, 을종2등항해 | 1985년 7월 1일부터 | | |
| 사, 을종1등기관사, 을종2등 | 1986년12월31일까지 | | |
| 기관사, 병종선박통신사 | | | |
| 병종항해사, 소형선박항해사 | 1986년 1월 1일부터 | | |
| 병종기관사, 소형선박기관사 | 1987년3월31일까지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면허증의 교부절차, 교부할 지방해운항만청, 한정면허에 대한 신면허증의 교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운항만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해운항만청장은 소형선박항해사 또는 소형선박기관사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신면허증을 교부하기 전에 해운항만청장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3조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별표2의 시험과목은 198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3급항해사 시험과목은 종전의 갑종2등항해사의 시험과목, 5급항해사의 시험과

목은 종전의 을종2등항해사의 시험과목(운용술중 화객의 적재를 제외한다), 3급기관사의 시험과목은 종전의 갑종2등기관사의 시험과목, 소형선박조종사의 시험과목은 종전의 소형선박항해사 및 소형선박기관사의 시험과목에 의한다.

②6급항해사·6급기관사 및 소형선박조종사의 시험방법은 1984년 12월 31일까지 면접시험으로 한다.

제4조 (종전의 학술시험에 합격한 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학술시험에 합격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이 영에 의한 승무경력을 갖추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이 영 시행전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이 영에 의한 승무경력을 갖추고 신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제5조 (어선면허를 받은 자의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 갑종선장 또는 어선 갑종1등항해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이 영 시행전에 별표1에 의한 상선 승무경력(외국 상선에 승무한 경력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9년 3월 31일까지 상선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정교육기관의 재학생·졸업생에 대한 경과조치) ①제16조의 규정은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4년 12월 31일까지 지정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자 또는 졸업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1988년 12월 31일까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별표1에 의한 승무경력에 불구하고 대학·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는 3급항해사 또는 3급기관사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는 5급항해사 또는 5급기관사의 시험을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1984년 4월 28일 이전에 해상근무를 시작한 자

2. 2년6월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자

제7조 (한국어업기술훈련소에 재학중인 자 또는 수료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한국어업기술훈련소에 재학중인 자 또는 한국어업기술훈련소를 수료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85년 12월 31일까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제8조 (갑판부 및 기관부의 승무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선박소유자는 1987년 3월 31일까지 종전의 승무기준에 따라 갑판부 및 기관부의 선박직원으로 해기사를 승무시킬 수 있다.

②해기사는 1987년 3월 31일까지 종전의 승무기준에 따라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선박직원으로 승무할 수 있다.

③1987년 3월 31일까지 외국선박에 적용할 갑판부 및 기관부의 승무기준은 해운항만청장이 이를 완화하여 따라 정할 수 있다.

④1987년 4월 1일 현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기준에 따라 외국선박의 갑판부 또는 기관부에 승무중인 자는 별표3의 승무기준에 불구하고 1989년 3월 31일까지 당해 선박의 선박직

원으로 승무할 수 있다.

제9조 (통신부의 승무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외국선박을 제외한 선박에 대하여 적용하는 통신부의 승무기준은 198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을종선박통신사로서 근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5년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5년 12월 31일 까지 1급통신사가 통신장으로 승무하여야하는 선박에 통신장으로 승무할 수 있다.

③1985년 12월 31일 현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장으로 승무중인 을종선박통신사는 당해 선박이 1985년12월31일 이후 최초로 국내항에 입항할 때까지 통신장으로 승무할 수 있다.

제10조 (계류된 선박의 승무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계류된 500톤 이상의 선박의 소유자가 별표3의 승무기준에 따라 해기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선장 또는 기관장의 직무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근해구역 또는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6천톤 이상의 외국선박에서 선장 또는 기관장의 직무에 3년이상 승무한 자(종전의 규정에 의한 갑종1등항해사 또는 갑종1등기관사 이하의 면허를 받은 자에 한한다)로서 해운항만청장이 정하는 직무인정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2급항해사 또는 2급기관사의 면허를 받은 후1987년 3월 31일까지 1급항해사 또는 1급기관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12조 (외국면허를 받은 통신장의 직무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외국으로부터 2급통신사 이상의 자격에 해당하는 통신사면허를 받고 총톤수 1천600톤이상의 외국선박에서 통신장의 직무에 3년이상 승무한자는 별표 3에 의한 승무기준에 불구하고 1987년3월31일까지 총톤수 1천600톤이상 1만톤미만의 외국선박에 통신장으로 승무할 수 있다.

부칙 <제11901호,1986. 5. 13.> (전파관리법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법령의 개정) 선박직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중 3. 통신부의 승무 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통신부의 승무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 종 별 | 선 | 박 | 선 박 승 무 |
| | | 직 원 | 자 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객선 |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 통신장 | 2 급 |
| (무선전신 | 아니하는 선박 | 통신사 | |
| 시설을 설비한 | | | |
| 선박에 한한 | 국제항해 | 여객정원 250 | 통신장 1 급 |
| 다) | 에 취항 | 인 미만 | 통신사 |
| | 하는 선 | 통신사 | 2 급 |
| | 박 | 통신사 | |
| | | | |
| | 여객정원 250 | 통신장 | 1 급 |
| | 인 이상 | 통신사 | |
| | | 통신사 | 2 급 |
| | | 2 인 | 통신사 |
| | | | |
| | | | |
| 여객선 및 어 |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 통신장 | 3 급 |
| 선외의 선박 | 아니하는 선박 | 통신사 | |
| (무선전신시설 | | | |
| 을 설비한 선 | 국제항해 | 총톤수 2만 | 통신장 2 급 |
| 박에 한한다) | 에 취항 | 톤미만의 선박 | 통신사 |
| | 하는 선 | | |
| | 박 | 총톤수 2만 | 통신장 1 급 |
| | | 톤이상의 선박 | 통신사 |
| | | | |
| | | | |
| 어 선 | 제1종 종업제한을 가 | 통신장 | 3 급 |
| (무선전신시설 | 진 선박 | 통신사 | |
| 을 설비한 선 | | | |
| 박에 한한다) | 제2종 또 | 총톤수 500톤 | 통신장 3 급 |
| | 는 제3종 | 미만의 선박 | 통신사 |
| | 종업제한 | | |
| | 을 가진 | 총톤수 500톤 | |
| | 선박 | 이상, 총톤수 | 통신장 2 급 |
| | | 2만톤 미만 | 통신사 |
| | | 의 선박 | |
| | | | |

| | | | | | |
|--|--|---------|-----|-----|--|
| | | 총톤수 2만 | 통신장 | 1 급 | |
| | | 톤이상의 선박 | | 통신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해운항만청장은 체신부장관이 전파관리법시행령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국의 제3종 국에 배치하여야 할 통신장의 자격을 경감한 때에는 그에 상응하여 통신부의 승무기준을 경감할 수 있다.

부칙 <제13264호, 1991. 1. 29.>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시험부터 시행한다.
- ②(1등급상위면허 필기시험 면제 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1등급 상위면허 필기시험의 면제는 1991년 2월 말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해기사면허 상실자에 대한 시험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자에 대한 시험의 특례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④(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중 이 영에 의한 교육과정과 동일하다고 해운항만청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 이수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관련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673호, 1992. 6. 30.> (전파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내지 ③생략

- ④선박직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중 “ 전파관리법 ”을 “ 전파법 ”으로 한다.
제8조제3항중 “ 전파관리법시행령 ”을 “ 전파법시행령 ”으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부칙 <제14090호, 1993. 12. 31.> (어선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선박직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의 3. 통신부의 승무기준중 어선(무선전신시설을 설비한 선박에 한한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어선(무선전신 | 총톤수 500톤 미만의 | 통신장 | 3급 통신사 |
| 시설을 설비한 | 선박 | | |
| 선박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톤수 500톤 이상 | 통신장 | 2급 통신사 |
| | 2만톤 미만의 선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톤수 2만톤 이상의 | 통신장 | 1급 통신사 |
| | 선박 | (외국선박은 | |
| | | 2급 통신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생략

부칙 <제14365호,1994. 8.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별표3제1호(비고) 및 별표3의2의 개정규정은 199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자급통신사의 면허 및 시험을 위한 승무경력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전파법에 의한 전파통신기사 1급, 전파통신기사 2급 및 전파통신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법에 의한 해당 전신급통신사의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대통령령 제13673호 전파법시행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전파전자에 관한 무선종사자의 종사범위에 종사할 수 있다는 인정서를 교부 받은 경우, 당해 전신급통신사의 면허취득 이후 승무한 경력은 이를 각각 별표 1의 3중 전자급통신사의 면허 및 시험을 위한 승무경력기준에 의한 해당경력으로 인정하여 제6조 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면허등급에 따른 해당 전자급통신사의 면허 및 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제16조제2항제1호의 종전규정에 의하여 실습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의 경우 그 실습기간은 별표1의3에 의한 승무경력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이 영에 의한 실습기간으로 본다.

제2조제7호, 제4조의2제1항제5호, 제5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내지 제5항, 제12조제5항, 제16조제1항·제2항제2호·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2항제7호, 제21조제1항·제3항, 제22조제4항·제6항, 제23조제1항제3호·제2항, 제24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5조, 별표 1의 제1호가목, 별표 3의 제3호의 비고란중 “해운항만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08> 내지 <116>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5379호, 1997. 5. 24.>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 & 생략

1* 선박직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3항·제4항,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24조제1항·제2항중 “지방해운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중 “지방해운항만청출장소의 장”을 “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장”으로 한다.

1(내지 3#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15598호, 1997. 12. 31.>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78호, 1998. 2.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호의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해기사 : 1999년 2월 1일

가.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선박

나.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 외의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선박중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2.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 외의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선박중 국내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해기사 : 2002년 2월 1일

제2조 (훈련기록부에 의한 승무경력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한 훈련기록부에 의하여 승무경력을 증명하여야 하는 자중 1998년 8월 1일 전에 승선공인을 받아 승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선박에서 하선공인을 받을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승무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승무하고 있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은 2002년 1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5급 이하의 항해사면허 또는 5급 이하의 기관사면허를 받은 자가 4급 이하의 기관사 또는 4급 이하의 항해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별표1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무경력기간을 산정 함에 있어서는 1998년 7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지정교육기관중 대학·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상선 또는 어선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 또는 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어선 또는 상선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별표1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무경력기간을 산정 함에 있어서는 1999년 7월 31일까지 제1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지정교육기관 외의 대학·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상선 또는 어선 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 또는 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어선 또는 상선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별표1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무경력기간을 산정 함에 있어서는 1999년 7월 31일까지 제1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영 시행당시 선박모의조종장비·선박기관모의조종장비 또는 선박통신모의조종장비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 또는 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별표1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무경력기간을 산정 함에 있어서는 1998년 7월 31일까지 제1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승무기준의 완화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승무기준의 완화허가를 받은 선장 또는 기관장의 승무기준은 제23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허가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5830호, 1998. 7. 1.> (선박안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선박직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선박안전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원 및 동법 제14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관

⑦내지 ⑪생략

부칙 <제15882호,1998. 9. 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해기사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사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해기사시험의 일부과목에 합격한 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사시험에 합격하거나 해기사시험의 일부과목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227호,1999. 4.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41호,1999. 8. 23.>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선박직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5호중 “해난심판법”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로 한다.

⑥내지 ⑬생략

부칙 <제17335호,2001. 8. 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제13조제5항, 별표 2 및 별표 3 비고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무경력기간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제2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어획물운반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국내항과 외국항간을 또는 외국항간을 운항하면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에 승무하고 있는 어선면허소지자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에 한하여 승무하도록 한정하는 상선면허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면허의 취득을 위한 시험을 면제한다.

②제22조제1항·제22조의2의 규정 및 제22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내항과 외국항간을 또는 외국항간을 운항하면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은 2002년 6월 30일까지 어선으로 본다.

③별표 4 제1호 비고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내항과 외국항간을 또는 외국항간을 운항하면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장 또는 1등 항해사의 직무수행을 위한 승무경력을 산정

함에 있어 이 영 시행전에 국내항과 외국항간을 또는 외국항간을 운항하면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에 승무한 경력은 상선에서의 승무경력으로 본다.

부칙 <제18254호, 2004. 1. 29.>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선박직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 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장 ” 을 “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 ” 으로 한다.

부칙 <제18312호, 2004. 3. 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76호, 2005. 9. 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형선박의 톤수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총톤수 30톤 미만의 소형선박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형선박으로 본다.
<개정 2008. 9. 18.>

부칙 <제20075호, 2007. 5. 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무경력의 증명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제2호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기사면허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형선박 조종사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교육과정 이수자 등에 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 중이거나 이수한 자는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무경력을 인정한다.

부칙 <제20300호, 2007. 9. 28.>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선박안전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으로, 같은 호 나목 중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및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 제2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선박안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선박안전법」 제29조에 따라”로 한다.

⑥ 부터 ⑮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0398호, 2007. 11. 30.> (해운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6호 중 “「해운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해운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 <제20544호, 2008. 1. 1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3. 법규의 과목내용란 제5호, 같은 표 제4호가목 과목내용란 (4)의 (다) 및 같은 표 제5호 7. 법규 및 직무일반의 과목내용란 제4호 중 “해양오염방지법”을 각각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 비고란의 제5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비고란의 제3호 중 “「해양오염방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를 “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로 한다.

⑤ 부터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0722호, 2008. 2. 29.>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3조의2제2항·제3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10조,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제6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전단, 제16조의2제3항, 제17조제6항, 제22조제2항·제3항·제4항 및 제26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제9조제2항·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제6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12조제5항, 제13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제2호·제2항제2호 및 제3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제7호, 제22조제4항·제6항, 제23조제1항제3호·제2항 전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5조, 제26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별표 1 및 별표 3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제3항·제4항, 제19조제2항 및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으로 한다.

별표 3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63>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1018호, 2008. 9. 18.>

이 영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68호,2011. 2.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승무경력기간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3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승무경력기간의 산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373호,2011. 12. 13.>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의 법규의 과목내용란 중 “해상교통안전법”을 “「해사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의 과목내용란 (4) 중 “「해상교통안전법」”을 “「해사안전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5호의 법규 및 직무일반의 과목내용란 중 “해상교통안전법”을 “「해사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의 법규의 과목내용명란 중 “「해상교통안전법」”을 “「해사안전법」”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23628호,2012. 2.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1호 및 제2호(비고란 제4호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무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 및 제2호(비고란 제4호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출항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4443호,2013. 3. 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8>까지 생략

<119>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3조의2제2항·제3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10조,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제6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전단, 제16조의2제3항, 제17조제6항 및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12조제6항,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4조의4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 제1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2항제7호, 제22조제4항·제6항,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5조, 별표 1의 제1호가목, 별표 3의 제3호 비고 및 같은 표 제6호 비고의 제1호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20>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4516호, 2013. 4.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50호,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985호, 2015. 1. 6.>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3항·제4항,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을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⑮부터 3)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6162호, 2015. 3.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3 제1호·제2호의 개정 규정 및 별표 3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정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유효기간 동안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 면허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면허취득교육 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 면허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지정교육기관 교육과정 이수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정교육기관에 입학한 사람의 승무경력기간 산정에 대해서는 제1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 설비를 갖춘 선박의 통신장 승무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통신장의 직무를 겸임하여 승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통신장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6조(어선의 승무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별표 1의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을 갖춘 사람은 별표 1의3 제1호 또는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본다.

제7조(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별표 3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을 갖추고 항해를 시작한 선박은 그 항해가 끝날 때까지 별표 3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8조(선장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승무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4 제1호에 따라 승무경력을 갖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는 별표 4 제1호 및 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장 또는 1등 항해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승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본다.

1. 어선 외의 선박에 승무하는 경우: 2015년 3월 25일부터 3년까지
2. 어선에 승무하는 경우: 2015년 3월 25일부터 5년까지

부칙 <제27031호, 2016.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1호 비고 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운전선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운전을 하기 위하여 진수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3조(3천톤 이상의 어선 외 선박의 갑판부 승무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별표 3 제1호에 따른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을 갖추고 항해를 시작한 선박은 그 항해가 끝날 때까지 별표 3 제1호 비고 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960호, 2017. 3. 27.>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7971호, 2017. 3. 29.>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제1항 및 제2항 중 “ 「항공법」 제26조제1호 ”를 각각 “ 「항공안전법」 제35조제1호 ”로 한다.

⑫부터 2@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8183호, 2017. 7.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장의 통신장 직무 겸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출항하는 어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509호, 2020. 3. 3.>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33호, 2020. 8. 11.>

이 영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2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12호, 2020. 12.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가목 비고 제5호 및 같은 표 제2호가목 비고 제3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을 각각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380호, 2021. 1. 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3225호, 2023. 1. 10.> (수산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1(까지 생략

2)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의 비고 제2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조업구역”을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의 조업구역”으로 한다.

2! 부터4*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33814호, 2023. 10.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취득교육 이수기간 등의 승무경력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설되는 면허취득교육과정 또는 해기사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사안전감독관의 근거 법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부터 2024년 1월 25일까지 해사안전감독관의 근거 법률에 관하여는 제20조제4호마목의 개정규정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을 “「해사안전법」 제58조제2항”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주 기관 추진력”을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주기관 추진력”으로 한다.

부칙 <제34152호, 2024. 1. 16.>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의 법규의 과목내용란 중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 및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의 법규의 과목내용란 중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 및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5호의 7. 법규 및 직무일반의 과목내용란 중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의 법규의 과목내용명란 중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5086호, 2024. 1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5급 항해사면허 등의 취득에 필요한 승무경력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의3 제1호 5급 항해사의 승무경력의 기간란의 개정규정(6급 항해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의 3년 승무경력기간 계산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6급 항해사면허를 취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의3 제2호 5급 기관사의 승무경력의 기간란의 개정규정(6급 기관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의 3년 승무경력기간 계산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6급 기관사면허를 취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811호, 2025. 10. 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 5.>

자동차선박의 설비(제3조의2관련)

1. 제1종 자동차선박

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선박의 기관에 관한 사항중 기관구역의 무인화설비를 구비할 것

나. 다음의 설비를 구비할 것

- 1) 선교 및 화재제어 장소에서의 소화펌프의 원격시동장치
- 2) 물 밸러스트 적재 및 배수의 원격제어장치(자동경사제어장치가 없는 선박 중 컨테이너 등을 하역할 때에는 특별히 선체의 경사 등을 제어할 필요가 있는 선박에 한한다)
- 3) 위성선위측정장치
- 4) 자동조타장치
- 5) 액체화물의 원격제어 하역장치(액체화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에 한한다)
- 6)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
- 7) 하역용 사이드포트(하역을 위한 선체 옆면 출입구를 말한다), 램프웨이(경사식 진출입 통로를 말한다) 및 폭로갑판 강제해치커버(갑판 아래 짐칸 입구를 강제로 덮는 장치를 말한다)의 동력개폐장치(폰톤형의 것을 제외한다)
- 8) 주기의 운전상태의 자동기록장치
- 9) 선수 및 선미의 계선장치의 원격제어장치
- 10) 위성전화통신이 가능한 설비(원양수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한한다)
- 11) 제어실용 공기조화장치의 이상경보장치

2. 제2종 자동차선박

가. 제1종 자동차선박의 설비를 구비할 것

나. 다음의 설비를 구비할 것

- 1) 선외로부터 주기용 연료유탱크 주유관밸브의 원격제어장치(밸브의 배치 등으로 인하여 원격제어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2) 주기용 연료유탱크(기관실내의 것을 제외한다)의 원격유면감시장치 및 고유면경보장치
- 3) 냉동컨테이너 운전상태 집중감시장치(냉동컨테이너 적재선에 한한다)
- 4) 하역호스연결용 크레인(탱커에 한한다)
- 5) 자동갑판세정장치(석탄·철광석 또는 이들과 유사한 화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에 한한다)
- 6) 선수 및 선미 계선장치의 현측 원격제어장치

- 7) 도선사용 사다리의 동력작동장치(1인이 제어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 8) 비상용 예인용 줄의 동력조작장치(인화성 고압가스 및 인화성 액체류를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에 한한다)

3. 제3종 자동화선박

가. 제2종 자동화선박의 설비를 구비할 것

나. 다음의 설비를 구비할 것

- 1) 선박지휘실·기관제어실 및 통신실이 인접하여 있고 상호통행이 용이하여 경보의 청취 및 수령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된 항해 당직관계의 집중감시 및 제어장치
- 2) 최적자동항법보조장치
- 3) 기관실·계류구역 기타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선내요소를 감시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카메라설비
- 4) 선박지휘실 현측에서 기관원격조정 및 원격조타장치
- 5) 화물창빌지 고위 경보장치(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에 한한다)
- 6) 모든 계류색의 드림에 감겨 있는 1개의 드림방식인 계류원치
- 7) 1인이 조작할 수 있는 예선색의 게이지 및 방출장치
- 8) 주방작업의 효율화를 위한 설비(주방시설의 합리적 배치와 자동접시탁이 및 건조기등을 포함한다)
- 9) 생활환경의 향상을 위한 설비

비 고

제1종·제2종 또는 제3종 자동화선박의 설비기준에 미달하는 설비가 2개 이하인 경우로서 그 해당설비 대신 그에 상당하는 효과가 있는 다른 종류의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이를 각각 그 해당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의2] 삭제 <1998.2.24>

■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24. 12. 17.>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제5조의2관련)

1. 항해사

| 받으려는
면허 | 승무경력 | | | |
|------------|------------------------|---|-------------------------------|----|
| | 자격 | 선박 | 직무 | 기간 |
| 1급
항해사 | 2급 항해사
또는
2급 운항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상선(자동화선박을 포함한다)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 | 선장, 1등 항해사 또는 1등 운항사 | 1년 |
| | | | 선장, 1등 항해사 및 1등 운항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 2년 |
| |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 1천600톤 미만의 상선 | 선장 또는 1등 항해사 | 2년 |
| | | | 선장 및 1등 항해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 3년 |
| | | 배수톤수 1천600톤 이상의 함정 | 함장 또는 부장 | 1년 |
| 2급
항해사 | 3급 항해사
또는
3급 운항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상선(자동화선박을 포함한다)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 | 선박직원 | 1년 |
| | | | 선장 또는 1등 항해사 | 2년 |
| |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 1천600톤 미만의 상선 | 선장 및 1등 항해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 3년 |
| | | | | |
| | | 배수톤수 1천600톤 이상의 함정 | 함장 또는 부장 | 1년 |

| | | 합정 | 합정의 운항 | 2년 |
|-----------|------------------------|---|-------------------------------|----|
| 3급
항해사 | 4급 항해사
또는
4급 운항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50톤 이상의 여객선 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길이 15
미터 이상의 어선 | 선박직원 | 1년 |
| |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상선 | 선장 또는 1등 항
해사 | 2년 |
| | | | 선장 및 1등 항해
사를 제외한 선박
직원 | 3년 |
| |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200톤 이상의 여객선 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길이 20
미터 이상의 어선 | 선박의 운항 | 4년 |
| | 4급 항해사 | 배수톤수 500톤 이상의 합
정 | 합장 또는 부장 | 1년 |
| | | | 합정의 운항 | 2년 |
| | | 배수톤수 500톤 이상의 합
정 | 합정의 운항 | 4년 |
| 4급
항해사 | 5급 항해사 | 총톤수 100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25톤 이상의 여객선
또는 길이 12미터 이상의
어선 | 선박직원 | 1년 |
| | | 총톤수 100톤 미만의 상선,
총톤수 5톤 이상 25톤 미만
의 여객선 또는 길이 9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의 어선 | 선박직원 | 2년 |

| | | | | |
|-----------|--------|---|--------|--|
| | | 총톤수 100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25톤 이상의 여객선
또는 길이 12미터 이상의
어선 | 선박의 운항 | 3년 6개월 |
| | 5급 항해사 | 배수톤수 100톤 이상의 함
정 | 함정의 운항 | 1년 |
| | | 배수톤수 100톤 이상의 함
정 | 함정의 운항 | 3년 6개월 |
| 5급
항해사 | 6급 항해사 | 길이 9미터 이상의 어선 | 선박직원 | 1년
(길이 20미터
이상의 어선에
서 1년 이상
승선한 승무경
력으로 6급 항
해사면허를 취
득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
승무경력기간
과 합산하여 3
년으로 한다.
이 경우 6급
항해사로서의
승무경력기간
은 1년 이상
포함되어야 한
다) |
| | | 총톤수 5톤 이상의 상선 | 선박직원 | 1년 |
| | | 길이 12미터 이상의 어선 | 선박의 운항 | 3년 |
| | | 총톤수 25톤 이상의 상선 | 선박의 운항 | 3년 |
| | 6급 항해사 | 배수톤수 5톤 이상의 함정 | 함정의 운항 | 1년 |
| | | 배수톤수 25톤 이상의 함정 | 함정의 운항 | 3년 |
| | | 길이 20미터 이상의 어선 | 선박의 운항 | 1년 |
| 6급
항해사 | | 길이 20미터 이상의 어선 | 선박의 운항 | 1년 |

| | | | |
|--|---------------------------|--------|----|
| | 길이 9미터 이상 20미터 미만
의 어선 | 선박의 운항 | 2년 |
| | 총톤수 5톤 이상의 상선 | 선박의 운항 | 2년 |
| | 배수톤수 5톤 이상의 함정 | 함정의 운항 | 2년 |

비고

- 5급 항해사부터 3급 항해사까지의 면허(어선면허는 제외한다)를 위한 승무경력에는 6개월 이상의 항해당직근무(실습을 포함한다)경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 4급 항해사부터 1급 항해사까지의 면허(어선면허는 제외한다)를 위한 승무경력에는 해당 선박 중 최상급 총톤수 이상의 선박에서의 6개월 이상의 승무경력(실습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야 하며, 5급 항해사면허(어선면허는 제외한다)를 위한 승무경력에는 해당 선박 중 최상급 총톤수 이상의 선박에서의 3개월 이상의 승무경력(실습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 받으려는 항해사면허가 상선면허인 경우의 승무경력은 상선에 승무한 경력만 해당하고, 어선면허인 경우의 승무경력은 어선에 승무한 경력만 해당한다. 다만, 함정에 승무한 경력은 상선면허 또는 어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산정에서 모두 인정한다.
- 비고 제3호에도 불구하고 항해선인 상선에서 당직항해사로 승무한 경력은 6개월에 한정하여 어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으로 인정한다.
- 5급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6급 이하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 시운전 선박에 승무한 경력은 2007년 11월 23일 이후 시운전 선박에 승무한 경력부터 인정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 자격란 중 운항사는 항해전문의 운항사를 말한다.
- 어선의 "길이"란 「선박안전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어선의 길이를 말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 "여객선"이란 여객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을 말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 "함정의 운항"이란 함정에 승선하여 기관의 운전과 조리업무를 제외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 "선박의 운항"이란 선박직원이 아닌 자로서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직원의 기관업무 보조 및 조리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2. 기관사

| 받으려는
면허 | 승무경력 | | | |
|------------|--------------|------------------------------|-----------------------|----|
| | 자격 | 선박 | 직무 | 기간 |
| 1급
기관사 | 2급 기관사
또는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 | 기관장, 운항장, 1등 기관사 또는 1 | 1년 |

| | | | | |
|-----------|------------------------|---|--|----|
| | 2급 운항사 | 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3천킬로
와트 이상의 선박 | 등 운항사
기관장, 운항장, 1
등 기관사 및 1등
운항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 2년 |
| |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
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
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1천
500킬로와트 이상 3천킬로
와트 미만의 선박 | 기관장 또는 1등
기관사
기관장 및 1등 기
관사를 제외한 선
박직원 | 2년 |
| | | 주기관 추진력이 3천킬로와
트 이상의 함정 | 기관장 | 3년 |
| | | | | 1년 |
| 2급
기관사 |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
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
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1천
50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 선박직원 | 1년 |
| |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
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
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
로와트 이상 1천 500킬로와
트 미만의 선박 | 기관장 또는 1등
기관사
기관장 및 1등 기
관사를 제외한 선
박직원 | 2년 |
| | | | 기관장 | 3년 |
| | | 주기관 추진력이 1천 500킬
로와트 이상의 함정 | 기관장 | 1년 |
| | | | 기관의 운전 | 2년 |
| 3급
기관사 | 4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
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
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
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 | 선박직원 | 1년 |

| | | | | |
|--------|--------|---|---|----------|
| | | 의 선박 | | |
| |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 75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 기관장 또는 1등 기관사
기관장 및 1등 기관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 2년
3년 |
| |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 기관의 운전 | 4년 |
| | 4급 기관사 |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 기관장
기관의 운전 | 1년
2년 |
| | |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 기관의 운전 | 4년 |
| 4급 기관사 | 5급 기관사 |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 선박직원 | 1년 |
| | |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 선박직원 | 2년 |
| | |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 기관의 운전 | 3년 6개월 |
| | 5급 기관사 |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 기관의 운전 | 1년 |
| | |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 기관의 운전 | 3년 6개월 |

| | | | | |
|-----------|--------|------------------------------------|--------|---|
| 5급
기관사 | 6급 기관사 | 주기관 추진력이 1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 선박직원 | 1년
(주기관 추진력이 50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에서 1년 이상 승선한 승무경력으로 6급 기관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 승무경력기간과 합산하여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6급 기관사로서의 승무경력기간은 1년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 | |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 기관의 운전 | 3년 |
| | 6급 기관사 | 주기관 추진력이 150킬로와트 이상의 합정 | 기관의 운전 | 1년 |
| | |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합정 | 기관의 운전 | 3년 |
| 6급
기관사 | | 주기관 추진력이 50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 기관의 운전 | 1년 |
| | | 주기관 추진력이 150킬로와트 이상 50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 기관의 운전 | 2년 |
| | | 주기관 추진력이 150킬로와트 이상의 합정 | 기관의 운전 | 2년 |

비고

1. 5급 기관사부터 3급 기관사까지의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에는 6개월 이상의 기관

당직근무(실습을 포함한다)경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2. 4급 기관사부터 1급 기관사까지의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에는 해당 선박 중 최상급 주기관 추진력 이상의 선박에서의 6개월 이상의 승무경력(실습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야 하며, 5급 기관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에는 해당 선박 중 최상급 주기관 추진력 이상의 선박에서의 3개월 이상의 승무경력(실습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제4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6급의 기관사면허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승무경력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어선면허 또는 상선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가. 주기관 추진력이 500킬로와트 이상인 어선에서 1년 이상 승선하거나 주기관 추진력이 150킬로와트 이상 500킬로와트 미만인 어선에서 2년 이상 승선한 승무경력: 어선면허

나. 위 표 6급 기관사의 승무경력 중 가목을 제외한 승무경력: 상선면허

4. 자격란 중 운항사는 기관전문의 운항사를 말한다.

2의2. 전자기관사

| 받으려는 면허 | 승무경력 | | | |
|-----------|---|--|----------------------------|----|
| | 자격 | 선박 | 직무 | 기간 |
| 전자
기관사 | 4급
기관사
이상의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
이상의
운항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말한다)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 기관부 선박직원 | 1년 |
| |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말한다)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 75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 기관장 또는 1등 기관사 | 1년 |
| | | | 기관장 및 1등 기관사를 제외한 기관부 선박직원 | 2년 |
| | 4급
기관사
이상의
기관사 |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 기관장 | 2년 |
| | 5급
기관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말한다)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 기관부 선박직원 | 2년 |

| | | | | |
|--|---|---|----------------------------|--------|
| | | 트 이상의 선박 | | |
| |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 75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 기관장 또는 1등 기관사 | 2년 |
| | | | 기관장 및 1등 기관사를 제외한 기관부 선박직원 | 3년 |
| |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말한다)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 기관의 운전 | 4년 |
| 전자
기관사
(제4조
제1항
제3호의
3에
따른
이동식
시추선
면허에
한정
한다) | 「국가기술포럼」에
따른 전기
기사 이상
또는 전자
기기 기능
장·전자기
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이동식 시추선 | 선박의 전기 또는 전자 업무 | 1년 |
| |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이동식 시추선 | 선박의 전기 또는 전자 업무 | 2년 |
| |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이동식 시추선 | 선박의 전기 또는 전자 업무 | 2년 6개월 |
| |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이동식 시추선 | 선박의 전기 또는 전자 업무 | 2년 6개월 |

3. 통신사

가. 전파통신급

| 받고자
하는
면허 | 승무경력 | | | |
|-----------------|-------|----------------------|----------|----|
| | 자격 | 선박 | 직무 | 기간 |
| 1급 통
법제처 | 전파전자통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 무선통신의 담당 | 6월 |

| | | | | |
|------------|----------------------|--|----------------|----------|
| 신사 | 신기사 이상 | 하는 무선통신설비를 갖춘 선박
합정 | 또는 실습 | |
| 2급 통
신사 | 전과전자통
신산업기사
이상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무선통신설비를 갖춘 선박
합정 | 무선통신의
또는 실습 | 담당
6월 |
| 3급 통
신사 | 전과전자통
신기능사 이
상 | 무선통신설비를 갖춘 선박
합정 | 무선통신의
또는 실습 | 담당
없음 |
| 4급 통
신사 | 제한무선 통
신사 이상 | 무선통신설비를 갖춘 선박
합정 | 무선통신의
또는 실습 | 담당
없음 |

나. 전파전자급

| 받고자
하는
면허 | 승무경력 | | | |
|-----------------|----------------------|---|-----------------|----|
| | 자격 | 선박 | 직무 | 기간 |
| 1급 통
신사 | 전과전자통
신기사 이상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GMDSS)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 | 통신의 담당 또는
실습 | 3월 |
| 2급 통
신사 | 전과전자통
신산업기사
이상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GMDSS)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 | 통신의 담당 또는
실습 | 3월 |
| 3급 통
신사 | 전과전자통
신기능사 이
상 |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 관
련설비를 갖춘 선박 | 통신의 담당 또는
실습 | 없음 |
| 4급 통
신사 | 해상무선 통
신사 이상 |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 관
련설비를 갖춘 선박 | 통신의 담당 또는
실습 | 없음 |

비고

1. 가목 및 나목의 자격은 전파법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어야 한다.
2. 무선통신 또는 통신의 실습은 선장·항해사 또는 운항사의 직무와 병행하여 할 수 있다.

4. 소형선박 조종사

| 받으려는
면허 | 승무경력 | | | |
|-------------|------|----------------|------------------|----|
| | 자격 | 선박 | 직무 | 기간 |
| 소형선박
조종사 | | 총톤수 2톤 이상의 선박 |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 2년 |
| | | 배수톤수 2톤 이상의 합정 | 합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 2년 |

비고

「납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납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한 납시어선 및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유선 및 도선에 승무한 경력은 톤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5. 운항사

| 받고자 하는
면허 | 승무경력 | | | |
|--------------|----------------------------------|---|--|----|
| | 자격 | 선박 | 직무 | 기간 |
| 1급 운항사 | 2급 운항사, 1급 항
해사 또는 1급 기관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
톤 이상의 자동
화선박 | 선장·운항장 또는
1등 운항사
선박직원 | 1년 |
| |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
톤 이상의 자동
화선박 | 선장·기관장·1
등 항해사 또는
1등 기관사
선박직원 | 2년 |
| |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
톤 이상의 자동
화선박 | 선장·기관장·1
등 항해사 또는
1등 기관사
선박직원 | 3년 |
| | | 배수톤수 1천
600톤 이상의
합정 | 합장 또는 부장 | 2년 |
| | | 배수톤수 1천
600톤 이상의
합정 | 합장 또는 부장 | 2년 |
| 2급 운항사 | 3급 운항사, 2급 항
해사 또는 2급 기관
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 수역을 항
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
톤 이상의 자동
화선박 | 선장·운항장 또는
1등 운항사
선박직원 | 1년 |
| |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
톤 이상의 자동
화선박 | 선장·기관장·1
등 항해사 또는
1등 기관사
선박직원 | 2년 |
| |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상선 | 선장·기관장·1
등 항해사 또는
1등 기관사
선박직원 | 3년 |
| | | 배수톤수 500톤
이상의 합정 | 합장 또는 부장 | 2년 |
| | | 배수톤수 500톤
이상의 합정 | 합장의 운항 | 3년 |
| 3급 운항사 | 4급 운항사, 3급 항
해사 또는 3급 기관
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
톤 이상의 자동
화선박 | 선박직원 | 1년 |
| |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
톤 이상의 자동
화선박 | 선장·기관장·1
등 항해사 또는
1등 기관사
선박직원 | 1년 |

| | | | | |
|--------|------------------|----------------------------------|-----------------|----|
| | | 원양수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상선 | 등 항해사 또는 1등 기관사 | 2년 |
| | | 배수톤수 200톤 이상의 합정 | 선박직원 | |
| | | | 합장 또는 부장 | 1년 |
| | | | 합정의 운항 | 2년 |
| 4급 운항사 | 4급 항해사 또는 4급 기관사 | | | |

비고

1. 받고자 하는 면허가 항해전문의 운항사인 경우의 자격은 항해사 또는 항해전문의 운항사에 한하며, 받고자 하는 면허가 기관전문의 운항사인 경우의 자격은 기관사 또는 기관전문의 운항사에 한한다.
2. 운항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위 표에 따른 승무경력에 등급별로 각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해당직근무경력 또는 기관당직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항해당직근무경력 또는 기관당직근무경력을 산정할 때에는 위 표에 따른 승무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 동안 행한 항해당직근무경력 또는 기관당직근무경력을 합산한다.
 - 가. 1급 항해전문의 운항사는 24월 이상의 항해당직근무와 6월 이상의 기관당직근무
 - 나. 1급 기관전문의 운항사는 24월 이상의 기관당직근무와 6월 이상의 항해당직근무
 - 다. 2급 항해전문의 운항사는 12월 이상의 항해당직근무와 6월 이상의 기관당직근무
 - 라. 2급 기관전문의 운항사는 12월 이상의 기관당직근무와 6월 이상의 항해당직근무
 - 마. 3급 운항사 또는 4급 운항사는 6월 이상의 항해당직근무(실습을 포함한다)와 6월 이상의 기관당직근무(실습을 포함한다)

6.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받으려는
면허 | 승무경력 | | | | |
|-----------------------------|------------------------|--|----------|----|----------|
| | 자격 | 선박 또는 항공기 | 직무 | 기간 | 승선
시간 |
| 중형
수면
비행
선박
조종사 | 4급 항해사 또는
4급 운항사 이상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50톤 이상의 여객선·어선 | 선박
직원 | 2년 | — |
| | | | | 3년 | |
| |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톤 이 | | | |

| | | | | | |
|----------------|---------------|---|------------|----|-------|
| | | 상 500톤 미만의 상선 | | | |
| | | 배수톤수 500톤 이상의 합정 | 함장 또는 부장 | 2년 | — |
| | | | 합정의 운항 | 3년 | — |
|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최대 이수중량 10톤 미만의 수면비행선박 | 선박 직원 | — | 200시간 |
| 소형 수면 비행선박 조종사 | 5급 항해사 이상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톤 이상의 상선 또는 총톤수 30톤 이상의 여객선·어선 | 선박 직원 | 1년 | — |
| |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톤 미만의 상선 또는 총톤수 5톤 이상 30톤 미만의 여객선·어선 | | 2년 | |
| | | 배수톤수 100톤 이상의 합정 | 함장 또는 부장 | 1년 | — |
| | | | 합정의 운항 | 2년 | |
| | | 수면비행선박 | 수면비행선박의 운항 | 2년 | — |

비고

항해사 또는 운항사 자격과 그에 따른 승무경력을 갖춘 사람이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승무경력 외에 「항공법」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1. 16.>

시험과목(제11조제1항관련)

1. 항해사

| 시험과목 | 과목내용 | 시험응시대상 면허등급 |
|------|--|--|
| 항해 | 항해계기
항로표지
해도(수로도지)
조석 및 해류
지문항법
천문항법
전파 및 레이더 항법
항해계획
국제해사기구의 표준 해사통신영어 | 6급 항해사 이상
3급 항해사 이하
3급 항해사 이하
3급 항해사 이하
6급 항해사 이상
5급 항해사 이상
6급 항해사 이상
4급 항해사 이상
5급 항해사
(국내항을 운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 운용 | 선박의 구조 및 설비
선박의 이동 및 조종
선박의 복원성
당직근무
기상 및 해상
선박의 동력장치
비상조치 및 손상제어
선내의료
수색 및 구조, 해상통신
승무원의 관리 및 훈련
선내의 의료제공에 관한 조직과
관리 | 2급 항해사 이하
6급 항해사 이상
6급 항해사 이상
3급 항해사 이하
6급 항해사 이상
6급 항해사 이상
6급 항해사 이상
3급 항해사 이하
6급 항해사 이상
3급 항해사 이상
2급 항해사 이상 |
| 법규 | 「개항질서법」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
「선박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상법」(해상편)
「해사안전기본법」 및 「해상교
통안전법」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 6급 항해사 이상
5급 항해사 이상
6급 항해사 이상
4급 항해사 이상

6급 항해사 이상
3급 항해사 이상
6급 항해사 이상
6급 항해사 이상 |
| 영어 | 국제해사기구의 표준 해사통신영어 | 5급 항해사 이상 |

| | | | |
|----|----|---|--|
| | | 해사영어 | (국내항을 운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5급 항해사를 제외한다)
3급 항해사 이상 |
| 전문 | 상선 | 화물의 취급 및 적하
「선박법」
해운실무(보험편 포함)
해사관련 국제협약(상선) | 6급 항해사 이상
3급 항해사 이하
3급 항해사 이상
4급 항해사 이상 |
| | 어선 | 어획물의 취급 및 적하
「어선법」
수산실무
해사관련 국제협약(어선) | 6급 항해사 이상
3급 항해사 이하
3급 항해사 이상
4급 항해사 이상 |

비고

1. 면접시험(영어 과목은 제외한다)은 과목내용과 관련한 실무적 지식과 이해도를 평가한다.
2. 영어 과목의 면접시험은 영어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되, 과목 내용의 세부 항목과 시험응시대상 면허등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어획물의 취급 및 적하와 「어선법」의 시험응시대상 면허등급은 항해선에 승선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2. 기관사

| 시험과목 | 과목내용 | 시험응시대상 면허등급 |
|-------|------------------------------|-------------|
| 기관(1) | 내연기관 | 6급 기관사 이상 |
| | 외연기관 | 6급 기관사 이상 |
| | 추진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 6급 기관사 이상 |
| | 연료 및 윤활제 | 6급 기관사 이상 |
| 기관(2) | 유체기계 및 환경오염방지기기 | 6급 기관사 이상 |
| | 냉동공학 및 공기조화장치 | 6급 기관사 이상 |
| | 기계공학법 | 5급 기관사 이상 |
| | | 3급 기관사 이하 |
| | 열역학 및 열전달 | 3급 기관사 이상 |
| | 기계역학 및 유체역학 | 3급 기관사 이상 |
| | 재료역학 및 금속재료학 | 3급 기관사 이상 |
| | 조선학(5급 기관사의 경우에는 선체구조에 한정한다) | 5급 기관사 이상 |
| | | 2급 기관사 이하 |
| | 설계제도 | 5급 기관사 이상 |

| | | |
|-------|--|--|
| | | 3급 기관사 이하 |
| 기관(3) | 전기공학 및 전기기기
전자공학 및 전자회로
공업계측 및 전기·전자계측
제어공학 및 제어기기 | 6급 기관사 이상
6급 기관사 이상
3급 기관사 이상
3급 기관사 이상 |
| 직무일반 | 당직근무 및 직무일반
선박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
응급의료
비상조치 및 손상제어
방화 및 소화 방법
해사관계 법령
기관관리
승무원관리 및 훈련
해사관련 국제협약
기관영어 | 3급 기관사 이하
3급 기관사 이하
3급 기관사 이하
6급 기관사 이상
3급 기관사 이하
3급 기관사 이하
2급 기관사 이상
3급 기관사 이상
3급 기관사 이상
5급 기관사(국내항을
운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 영어 | 기관영어

해사영어 | 5급 기관사 이상(국내항을
운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5급 기관사를 제외한다)
3급 기관사 이상 |

비고

1. 면접시험(영어 과목은 제외한다)은 과목내용과 관련한 실무적 지식과 이해도를 평가한다.
2. 영어 과목의 면접시험은 영어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되, 과목 내용의 세부 항목과 시험응시대상 면허등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전자기관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이 3급 기관사 이하의 면허를 얻기 위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기관(3), 직무일반 및 영어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2의2. 전자기관사

| 시험과목 | 과목내용 |
|---------|-----------------------------|
| 전자기관(1) | 전기공학
전자기기
전자공학 및 전자회로 |

| | |
|---------|--|
| | 공업계측 및 전기·전자계측
제어공학 및 제어기기 |
| 전자기관(2) | 선박자동화 및 선내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
전자 분사제어 시스템
전자항해 시스템
무선통신 시스템
갑판기기와 하역기기 제어 시스템
전력변환 시스템 |
| 직무일반 | 당직근무 및 직무일반
선박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
응급의료
비상조치 및 손상제어
방화 및 소화 방법
해사관계 법령
승무원관리 및 훈련
해사관련 국제협약 |
| 영어 | 기관영어
해사영어 |

비고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기관전문) 이상의 면허를 가진 사람(3급 기관사 이상 또는 기관전문 3급 운항사 이상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전자기관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직무일반 및 영어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3. 통신사

| 시험과목 | 과 목 내 용 | 시험응시대상
면 허 등 급 |
|------------|---|--|
| 1. 선박통신 운용 | 1. 선박통신설비의 보수 관리
2. 수색과 구조 무선통신
3. 허위의 조난경보 방지와 취소절차
4. 선박보고시스템
5. 무선통신 의뢰서비스
6. 국제신호서와 표준해사항해용어의 이용 | 2급 통신사이상
4급 통신사이상
4급 통신사이상
4급 통신사이상
4급 통신사이상
3급 통신사이상 |
| 2. 비상무선 통신 | 1. 퇴선, 화재 및 통신설비 고장시의 비상무선통신에 관한 규정
2. 무선통신의 취급 안전 | 4급 통신사이상
4급 통신사이상 |

4. 소형선박 조종사

가. 소형선박 조종사의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 시험과목 | 과목내용 |
|------|---|
| 항해 | 항해계기
항법
해도 및 항로표지
기상 및 해상
항해계획 |
| 운용 | 선체·설비 및 속구
구명설비 및 통신장비
선박조종 일반
황천 시의 조종
비상제어 및 해난방지 |
| 기관 | 내연기관 및 추진장치
보조기기 및 전기장치
기관고장 시의 대책
연료유 수급 |
| 법규 | 「해사안전기본법」 및 「해상교통안전법」
「개항질서법」
「해양환경관리법」 |

나. 소형선박 조종사의 실기시험

| 시험과목 | 과목내용 |
|----------|---|
| 소형선박의 취급 | 출항의 준비 및 점검
출항 준비작업 및 계류
결삭(結索)
방위측정 |
| 기본조종 | 안전 확인
발진·직진·정지
후진
변침(變針)·선회 및 연속선회 |
| 응용조종 | 인명구조
피항(避航)
이안(移岸) 및 착안(着岸) |

5. 운항사

| 시험과목 | 과목내용 | 시험응시대상면허등급 | |
|------|------|------------|------|
| | | 항해전문 | 기관전문 |

| | | | |
|----------|---|--|--|
| 1. 항 해 | 1. 항해계기
2. 항로표지
3. 해도(수로표지를 말한다)
4. 조선 및 해류
5. 지문항법
6. 천문항법
7. 전파 및 레이다 항법
8. 항해계획 | 4급 운항사이상
3급 운항사이하
3급 운항사이하
3급 운항사이하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
| 2. 운 용 | 1. 선박의 구조 및 설비
2. 선박의 이동 및 조종
3. 선박의 복원성
4. 기상 및 해상
5. 비상조치 및 손상제어
6. 선내의료
7. 수색 및 구조
8. 승무원의 관리 및 훈련 | 2급 운항사이하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3급 운항사이하
4급 운항사이상
3급 운항사이상 |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3급 운항사이상 |
| 3. 전 문 | 1. 화물의 취급 및 적하
2. 선박법
3. 해운실무(보험편을 포함한다)
4. 해사관련 국제협약(상선의 경
우에 한한다)
5. 상법(해상편에 한한다) | 4급 운항사이상
3급 운항사이하
3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3급 운항사이상 |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
4급 운항사이상
— |
| 4. 기관(1) | 1. 내연기관
2. 외연기관
3. 추진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4. 연료 및 윤활제 |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
| 5. 기관(2) | 1. 유체기계 및 환경오염방지기기
2. 냉동공학 및 공기조화장치
3. 기계공학
4. 열역학 및 열전달
5. 기계역학 및 유체역학
6. 재료역학 및 금속재료학
7. 조선학
8. 설계제도 |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
—
—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3급 운항사이하
3급 운항사이상
3급 운항사이상
3급 운항사이상
2급 운항사이하
3급 운항사이하 |
| 6. 기관(3) | 1. 전기공학 및 전기기기 | 4급 운항사이상 | 4급 운항사이상 |

| | | | |
|--------------|---------------------------------|----------|----------|
| | 2. 전자공학 및 전자회로 | 4급 운항사이상 | 4급 운항사이상 |
| | 3. 공업계측 및 전기·전자계측 | — | 3급 운항사이상 |
| | 4. 제어공학 및 제어기기 | — | 3급 운항사이상 |
| | 5. 선박자동화 시스템 | 4급 운항사이상 | 4급 운항사이상 |
| 7. 법규 및 직무일반 | 1.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 및 개항질서법 | 4급 운항사이상 | 4급 운항사이상 |
| | 2.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 4급 운항사이상 | 4급 운항사이상 |
| | 3. 선박안전법 | 4급 운항사이상 | 4급 운항사이상 |
| | 4. 「해양환경관리법」 | 4급 운항사이상 | 4급 운항사이상 |
| | 5.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 | 4급 운항사이상 | 4급 운항사이상 |
| | 6. 자동화선박의 운항당직에 관한 사항 | 4급 운항사이상 | 4급 운항사이상 |
| | 7. 자동화선박의 직무일반 | 4급 운항사이상 | 4급 운항사이상 |
| | 8. 기관관리 | 4급 운항사이상 | 2급 운항사이상 |
| 8. 영 어 | 1. 국제해사기구의 표준해사통신 영어 | 4급 운항사이상 | 4급 운항사이상 |
| | 2. 해사영어 | 3급 운항사이상 | — |
| | 3. 기관영어 | 4급 운항사이상 | 4급 운항사이상 |

비 고

1. 항해사의 면허를 가진 자(항해사시험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가 운항사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시험문제의 출제는 4급 기관사의 수준으로 하고, 항해·운용 및 전문의 시험과목을 면제한다.
2. 기관사의 면허를 가진 자(기관사시험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가 운항사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시험문제의 출제는 4급 항해사의 수준으로 하고, 기관(1)·기관(2) 및 기관(3)의 시험과목을 면제한다.
3. 운항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1등급 상위의 동일전문분야의 운항사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항해전문은 기관(1)·기관(2) 및 기관(3)의 시험과목을 면제하고, 기관전문은 항해·운용 및 전문의 시험과목을 면제한다.

6.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과목명 | 과목내용명 | 시험 응시대상 면허등급 |
|-----|----------|------------------|
| 항해 | 항해계기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 | 항로표지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 | 해도(수로도지)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 | 조석 및 해류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 | | |
|----------|---|------------------|
| | 지문항법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 | 천문항법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 | 전파 및 레이더항법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 | 항해계획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 운용 | 수면비행선의 구조, 설비 및 기능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 | 수면비행선의 조종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 | 복원성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 | 비상조치 및 손상제어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 | 당직근무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 | 기상 및 해상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 | 선내의료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 | 수색 및 구조, 해상통신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 | 승무원의 관리 및 훈련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 법규 | 「개항질서법」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 |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 | 「선박안전법」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 | 「해양환경관리법」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 | 「상법」 (해상편)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 | 「해사안전기본법」, 「해상 교통안전법」 및 「1972년 국제해양충돌예방규칙 협약」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 | 「선박법」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 | 해운실무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 | 해사관련국제협약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 영어 | 항공법규 개론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 | 국제해사기구의 표준해사통신영어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 | 해사영어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 수면비행선박공학 | 공기역학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 | 유체역학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 | 제어시스템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 | 공기조화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 | 비행이론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 | | |
|--|-----------|------------------|
| | 동력장치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 | 연료 및 윤활제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 | 전기전자공학 기초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비고

1. 응시자가 5급 항해사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항해의 시험과목을 면제하고, 4급항해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항해 및 영어의 시험과목을 면제한다.
2. 응시자가 「항공법」에 따른 사업용 조종사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운용의 시험과목을 면제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운송용 조종사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운용 및 수면비행선박공학의 시험과목을 면제한다.
3. 응시자가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자격(한정면허를 포함한다)을 가진 경우에는 운용과 수면비행선박공학의 시험과목을 면제한다.

■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10. 1.>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 (제22조제1항관련)

1. 소형선박을 제외한 선박의 갑판부의 승무기준

가. 어선 외의 선박

| 선박의 항행구역 | | 선박의 크기
(총톤수) | 선박직원 | 승무자격 | |
|----------|----------------------|----------------------|--------------|------------------|------------------|
| | | | | 여객선 | 여객선 외의 선박 |
| 연안
수역 | 평수구역 | 200톤 미만 | 선장 | 5급 항해사 | 6급 항해사 |
| | | 200톤 이상
1천600톤 미만 | 선장 | 4급 항해사 | 5급 항해사 |
| | | 1천600톤 이상 | 선장
1등 항해사 |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
| | 평수구역을
제외한
연안수역 | 200톤 미만 | 선장
1등 항해사 |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 6급 항해사
— |
| | | 200톤 이상
500톤 미만 | 선장
1등 항해사 |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
| | | 500톤 이상
1천600톤 미만 | 선장
1등 항해사 | 3급 항해사
5급 항해사 |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
| | | 1천600톤 이상
3천톤 미만 | 선장
1등 항해사 |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
| | | 3천톤 이상
5천톤 미만 | 선장
1등 항해사 |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

| | | | | | |
|------|--|----------------------|----------------------------------|--------------------------------------|--------------------------------------|
| | | |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 5급 항해사
— |
| | | 5천톤 이상 | 선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 |
| 원양수역 | | 200톤 미만 | 선장
1등 항해사 |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 4급 항해사
— |
| | | 200톤 이상
500톤 미만 | 선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4급 항해사 |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 |
| | | 500톤 이상
1천600톤 미만 | 선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 |
| | | 1천600톤 이상
3천톤 미만 | 선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
| | | 3천톤 이상
6천톤 미만 | 선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4급 항해사 |
| | | 6천톤 이상 | 선장 | 1급 항해사 | 1급 항해사 |

| | | | | |
|--|--|--------|--------|--------|
| | | 1등 항해사 | 2급 항해사 | 2급 항해사 |
| | | 2등 항해사 | 3급 항해사 | 3급 항해사 |
| | | 3등 항해사 | 3급 항해사 | 4급 항해사 |

비고

- 부선(艇船)·로프 등으로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선(曳船)의 경우 위 표의 승무기준보다 1등급 상위의 자격소지자가 선장으로 승무하여야 한다.
-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부선과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선의 경우 위 표의 최하위 선박직원의 승무기준과 같은 등급 또는 바로 아래 등급의 자격소지자 1명 이상이 추가하여 승무하여야 한다.
- 비고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압항(押航) 예·부선의 경우 예선과 부선의 총톤수를 합산한 톤수로 한 단일선박의 승무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여객선"이란 여객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을 말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해양폐기물 배출해역으로 한정하여 운항하는 폐기물운반선(선박검사증서상 항행구역이 해양폐기물 배출해역으로 지정된 선박을 말한다)은 연안수역의 승무기준을 적용한다.
- 부선·로프 등으로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선의 항행구역이 평수구역을 제외한 연안수역으로서 해당 예선의 크기가 총톤수 200톤 미만이고,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에는 6급 항해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1등 항해사 1명이 추가하여 승무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운항교육을 이수한 6급 기관사 이상의 기관사는 연안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요트 중 승객이 13명 미만이고, 총톤수 55톤 미만인 동력요트에서 선장의 직무를 할 수 있다.

나. 어선

| 어선의 항행구역 | 어선의 길이 | 선박직원 | 승무자격 |
|----------|--------------------|--------------|--|
| 제한수역 | 24미터 미만 | 선장 | 6급 항해사 |
| | 24미터 이상
45미터 미만 | 선장
1등 항해사 | 5급 항해사(총톤수 200톤
미만은 6급 항해사)
6급 항해사 |

| | | | |
|-------|--------------------|----------------------------------|--|
| | 45미터 이상 | 선장
1등 항해사 | 3급 항해사(총톤수 500톤
미만은 6급 항해사)
5급 항해사(총톤수 500톤
미만은 6급 항해사) |
| 무제한수역 | 24미터 미만 | 선장 | 6급 항해사 |
| | 24미터 이상
45미터 미만 | 선장
1등 항해사 | 5급 항해사(총톤수 200톤
미만은 6급 항해사)
6급 항해사 |
| | 45미터 이상
60미터 미만 | 선장
1등 항해사 | 4급 항해사(총톤수 500톤
미만은 5급 항해사)
5급 항해사(총톤수 500톤
미만은 6급 항해사) |
| | 60미터 이상
80미터 미만 | 선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 3급 항해사(총톤수 500톤
미만은 5급 항해사)
4급 항해사(총톤수 500톤
미만은 6급 항해사)
5급 항해사 |
| | 80미터 이상 | 선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

비고

1. 총톤수 20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1등 항해사가 승

무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총톤수 2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2등 항해사가 승무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어선의 "길이"란 「선박안전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어선의 길이를 말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2. 소형선박을 제외한 선박의 기관부의 승무기준

가. 어선 외의 선박

| 선박의
항행구역 | | 주기관 추진력 | 선박직원 | 승무자격 |
|-------------|------------------------------|----------------------------|---------------|------------------|
| 연안
수역 | 평수
구역 | 750킬로와트 미만 | 기관장 | 6급 기관사 |
| | | 750킬로와트 이상
3천킬로와트 미만 | 기관장 | 5급 기관사 |
| | | 3천킬로와트 이상 | 기관장
1등 기관사 |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
| | 평수
구역을
제외한
연안
수역 | 750킬로와트 미만 | 기관장 | 6급 기관사 |
| | | 750킬로와트 이상
1천500킬로와트 미만 | 기관장
1등 기관사 |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
| | | 1천500킬로와트 이상
3천킬로와트 미만 | 기관장
1등 기관사 |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
| | | 3천킬로와트 이상 | 기관장
1등 기관사 |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

| | | | |
|------|----------------------------|-----------------------------------|--------------------------------------|
| 원양수역 | 750킬로와트 미만 | 기관장
1등 기관사 | 4급 기관사
6급 기관사 |
| | 750킬로와트 이상
1천500킬로와트 미만 | 기관장
1등 기관사 |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
| | 1천500킬로와트 이상
3천킬로와트 미만 | 기관장
1등 기관사
2등 기관사 |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
| | 3천킬로와트 이상
6천킬로와트 미만 | 기관장
1등 기관사
2등 기관사
3등 기관사 |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
| | 6천킬로와트 이상 | 기관장
1등 기관사
2등 기관사
3등 기관사 |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

비고

1. 기관의 운전과 관련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 중 전자기관사의 면허증을 가진 사람, 「국가기술훈격법」에 따른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 또는 전자기사 또는 전자기기에 관한 전자기기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3등 기관사가 승무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영해만을 항행하는 예선 또는 연안여객선으로서 선박의 통상적인 항행시간(최근 6개월간 각 항차당 항행시간이 가장 긴 순서부터 차례로 6회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시간)이 10시간(연안여객선은 6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등 기관사가 승무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근해구역에 지정된 해양폐기물 배출해역을 한정하여 운항하는 폐기물 폐기물운반선(선박검사

중서상 항행구역이 해양폐기물 배출해역으로 지정된 선박을 말한다)은 연안수역의 승무기준을 적용한다.

4. 부선·로프 등으로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선의 항행구역이 평수구역을 제외한 연안수역으로서 해당 예선의 크기가 총톤수 200톤 미만이고,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에는 1등 기관사가 승무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안전교육을 이수한 6급 항해사 이상의 항해사는 연안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요트 중 승객이 13명 미만으로서 총톤수 55톤 미만이고,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미만인 동력요트에서 기관장의 직무를 할 수 있다.

나. 어선

| 어선의
항행구역 | 주기관 추진력 | 선박직원 | 승무자격 |
|-------------|----------------------------|---------------|--|
| 제한수역 | 750킬로와트 미만 | 기관장 | 6급 기관사 |
| | 750킬로와트 이상
1천500킬로와트 미만 | 기관장
1등 기관사 | 5급 기관사(총톤수 200톤
미만은 6급 기관사)
6급 기관사 |
| | 1천500킬로와트 이상
3천킬로와트 미만 | 기관장
1등 기관사 | 4급 기관사(총톤수 500톤
미만은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
| | 3천킬로와트 이상 | 기관장
1등 기관사 | 3급 기관사
5급 기관사 |
| 무제한수역 | 750킬로와트 미만 | 기관장
1등 기관사 | 5급 기관사(총톤수 200톤
미만은 6급 기관사)
6급 기관사 |
| | 750킬로와트 이상 | 기관장 | 5급 기관사 |

| | | | |
|--|---------------------------|-----------------------------------|--|
| | 1천500킬로와트 미만 | 1등 기관사 | 6급 기관사 |
| | 1천500킬로와트 이상
3천킬로와트 미만 | 기관장
1등 기관사
2등 기관사 | 3급 기관사(총톤수 500톤
미만은 5급 기관사)
4급 기관사(총톤수 500톤
미만은 6급 기관사)
5급 기관사 |
| | 3천킬로와트 이상 | 기관장
1등 기관사
2등 기관사
3등 기관사 |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

비고

1. 총톤수 20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1등 기관사가 승무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총톤수 2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2등 항해사가 승무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관의 운전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 중 전자기관사의 면허증을 가진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전자기사 또는 전자기기에 관한 전자기기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3등 기관사가 승무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통신급(전파통신급에 한정한다)의 승무기준

| 선박의 종류 | 선박 | 선박직원 | 승무자격 |
|--|-----------------|------------|------------------|
| 여객선
(무선전신시설을
설비한
선박에
한정한다) | 여객정원 250명 미만 | 통신장
통신사 | 1급 통신사
2급 통신사 |
| | 여객정원 250명 이상 | 통신장
통신사 | 1급 통신사
2급 통신사 |
| 여객선 및 어선 |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 통신장 | 3급 통신사 |

| | | | | |
|---|---------------------------|-------------------|-----|-----------------------------|
| 외의 선박
(무선전신시설
을 설비한
선박에
한정한다) | 선박 | | | |
|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 총톤수 2만톤
미만의 선박 | 통신장 | 2급 통신사 |
| | | 총톤수 2만톤
이상의 선박 | 통신장 | 1급 통신사
(외국선박은 2급
통신사) |
| 어선
(무선전신설비
를 설비한
선박에
한정한다) |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 | | 통신장 | 3급 통신사 |
| | 총톤수 500톤 이상 2만톤 미만의
선박 | | 통신장 | 2급 통신사 |
| | 총톤수 2만톤 이상의 선박 | | 통신장 | 1급 통신사
(외국선박은 2급
통신사) |

비고

1. 해양수산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법 시행령」 제117조제2항에 따라 무선종사자의 자격별 정원을 줄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통신부의 승무기준을 경감할 수 있다.
2.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1천600톤 미만의 외국선박(여객선은 제외한다)에 배치하여야 하는 통신장의 승무자격은 3급 통신사로 한다.

4. 소형선박의 승무기준

| 선박의
항행구역 | 선박의 구분 | 선 박 직 원 | 승 무 자 격 |
|-------------|----------|------------|--------------------|
| 연 안 수 역 | 여객선 | 선 장
기관장 | 6급 항해사
소형선박 조종사 |
| | 여객선외의 선박 | 선장 및 기관장 | 소형선박 조종사 |
| 원 양 수 역 | 여객선 | 선 장
기관장 | 6급 항해사
6급 기관사 |

| | | | |
|--|---------------|----------|----------|
| | 여객선 및 어선외의 선박 | 선 장 | 6급 항해사 |
| | | 기관장 | 소형선박 조종사 |
| | 어 선 | 선장 및 기관장 | 소형선박 조종사 |

비 고

1. 6급 항해사 이상의 항해사가 소형선박의 기관과정교육을 이수할 경우 또는 6급 기관사 이상의 기관사가 소형선박의 항해과정교육을 이수할 경우에는 연안수역의 여객선외의 선박 또는 원양수역의 어선에서 선장 및 기관장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2. 원양수역에서의 어선의 항행구역은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의 조업구역으로 한다.
3. 부선·로프 등으로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선의 경우에는 6급 이상의 항해사면허를 가지고 소형선박의 기관과정교육을 이수한 자가 선장 및 기관장의 직무로 승무하여야 한다.
4. 항만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구역내만을 운항하는 통선은 여객선외의 선박의 승무기준을 적용한다.

5. 자동화선박의 승무기준

| 선박
의
항행
구역 | 선박 | | 선박직원 | 승 무 자 격 | |
|---------------------|-------------------------------------|--------------|--|--|--|
| | 크기(총톤수 또는 주기관추진력) | 유형 | | 여객선 | 여객선외의 선박 |
| 연안수역 | 3천톤 이상 | 제 2 종 또는 제3종 | 선 장
운항장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통신장 | 2급 운항사(항해전문)
3급 운항사(기관전문)
4급 운항사(기관전문)
4급 운항사(항해전문)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 | 3급 운항사(항해전문)
3급 운항사(기관전문)
4급 운항사(기관전문)
4급 운항사(항해전문)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 |
| 원양수역 | 3천톤이상 6천톤 미만 또는 3천킬로와트 이상 6천킬로와트 미만 | 제1종 | 선 장
기관장
1등 항해사
1등 기관사
2등 항해사 | 1급 항해사
2급 기관사
2급 항해사 또는 2급 운항사(항해전문)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기관전문)
3급 항해사 또는 3급 운항사(항해전문) | 2급 항해사
2급 기관사
3급 항해사 또는 3급 운항사(항해전문)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기관전문)
4급 항해사 또는 4급 운항사(항해전문) |

| | | | | | |
|---------------------|-----|--------|------------------------|--------------------------|--------------------------|
| | | | 2등 기관사 | 4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기관전문) | 4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기관전문) |
| | | | 3등 운항사 | 4급 운항사(항해전문 또는 기관전문) | 4급 운항사(항해전문 또는 기관전문) |
| | | | 통신장 |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 |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 |
| | | 제2종 | 선 장 | 1급 항해사 | 2급 항해사 |
| | | | 기관장 | 2급 기관사 | 2급 기관사 |
| | | | 1등 항해사 | 2급 항해사 또는 2급 운항사(항해전문) | 3급 항해사 또는 3급 운항사(항해전문) |
| | | | 1등 기관사 |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기관전문) |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기관전문) |
| | | | 2등 운항사 (2명) | 4급 운항사(항해전문 1명, 기관전문 1명) | 4급 운항사(항해전문 1명, 기관전문 1명) |
| | | | 통신장 |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 |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 |
| | | 제3종 | 선 장 | 1급 운항사(항해전문) | 2급 운항사(항해전문) |
| | | | 운항장 | 1급 운항사(기관전문) | 2급 운항사(기관전문) |
| | | | 1등 운항사 (2명) | 2급 운항사(항해전문 1명, 기관전문 1명) | 3급 운항사(항해전문 1명, 기관전문 1명) |
| | | | 2등 운항사 (3명) | 3급 운항사(항해전문 2명, 기관전문 1명) | 4급 운항사(항해전문 2명, 기관전문 1명) |
| | | | 3등 운항사 (3명) | 4급 운항사(항해전문 1명, 기관전문 2명) | 4급 운항사(항해전문 1명, 기관전문 2명) |
| 6천톤 이상 또는 6천킬로와트 이상 | 제1종 | | 선 장 | 1급 항해사 | 1급 항해사 |
| | | 기관장 | 1급 기관사 | 1급 기관사 | |
| | | 1등 항해사 | 2급 항해사 또는 2급 운항사(항해전문) | 2급 항해사 또는 2급 운항사(항해전문) | |
| | | 1등 기관사 | 2급 기관사 또는 2급 운항사(기관전문) | 2급 기관사 또는 2급 운항사(기관전문) | |
| | | 2등 항해사 | 3급 항해사 또는 3급 운항사(항해전문) | 3급 항해사 또는 3급 운항사(항해전문) | |
| | | 2등 기관사 |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기관전문) |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기관전문) | |
| | | 3등 운항사 | 3급 운항사(항해전문) | 3급 운항사(항해전문) | |

| | | | | | |
|--|--|-----|--|--|--|
| | | | 통신장 | 또는 기관전문)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 | 또는 기관전문)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 |
| | | 제2종 | 선 장
기관장
1등 항해사
1등 기관사
2등 운항사
(2명)
통신장 | 1급 항해사
1급 기관사
2급 항해사 또는 2급
운항사(항해전문)
2급 기관사 또는 2급
운항사(기관전문)
3급 운항사(항해전문
1명, 기관전문 1명)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 | 1급 항해사
1급 기관사
2급 항해사 또는 2급
운항사(항해전문)
2급 기관사 또는 2급
운항사(기관전문)
3급 운항사(항해전문
1명, 기관전문 1명)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 |
| | | 제3종 | 선 장
운항장
1등 운항사
(2명)
2등 운항사
(3명)
3등 운항사
(3명) | 1급 운항사(항해전문)
1급 운항사(기관전문)
2급 운항사(항해전문
1명, 기관전문 1명)
3급 운항사(항해전문
2명, 기관전문 1명)
4급 운항사(항해전문
1명, 기관전문 2명) | 1급 운항사(항해전문)
1급 운항사(기관전문)
2급 운항사(항해전문
1명, 기관전문 1명)
3급 운항사(항해전문
2명, 기관전문 1명)
4급 운항사(항해전문
1명, 기관전문 2명) |

비 고

1. 선장·운항장·1등 운항사·2등 운항사 또는 3등 운항사의 직무를 수행할 운항사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등급의 항해사 및 기관사를 각각 승무시켜야 한다.
2. 총톤수 3천톤 미만의 자동화선박은 갑판부·기관부 및 통신부의 승무기준을 적용한다.
3. 선박직원의 승무자격은 항해사와 운항사의 경우에는 총톤수를 기준으로 하며, 기관사의 경우에는 주기관 추진력을 기준으로 한다.

6. 수면비행선박의 승무기준

| 항행구역 | 선박의 종류 | 선박직원 | 승무자격 |
|------|-----------|---------------|--------------------------------|
| 연안수역 | 소형 수면비행선박 | 선 장
1등 항해사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 | 중형 수면비행선박 | 선 장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 | | | |
|------|-----------|--------|---------------|
| 원양수역 | 소형 수면비행선박 | 1등 항해사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 | | 선장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 | 중형 수면비행선박 | 1등 항해사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 | | 선장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 | | 1등 항해사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비고

1.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소형 수면비행선박의 연속항행시간이 2시간 이내이거나, 해당 선박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충돌예방을 위한 장애물 탐지 및 회피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1등 항해사의 승무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수면비행선박이 여객선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중형 수면비행선박의 연속항행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승무자격이 적합한 1등 항해사 1명을 추가로 승무시켜야 한다.
7. 항행구역이 연안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을 말한다)인 시운전선박의 승무기준

가. 어선 외의 선박

| 갑판부의 승무기준 | | | 기관부의 승무기준 | | |
|-------------------|------------------------|----------------------------|------------------|---------------|------------------|
| 선박의 크기
(총톤수) | 선박직원 | 승무자격 | 주기관
추진력 | 선박직원 | 승무자격 |
| 500톤 미만 | 선장
1등 항해사 |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 1천500킬로
와트 미만 | 기관장
1등 기관사 |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
| 500톤 이상
3천톤 미만 | 선장
1등 항해사 |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 1천500킬로
와트 이상 | 기관장
1등 기관사 |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
| 3천톤 이상
6천톤 미만 | 선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 | | |
| 6천톤 이상 | 선장 | 1급 항해사 | | | |

| | | | | | |
|--|----------------------------|----------------------------|--|--|--|
| |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 | | |
|--|----------------------------|----------------------------|--|--|--|

나. 어선

| 갑판부의 승무기준 | | | 기관부의 승무기준 | | |
|---------------------|------------------------|----------------------------|------------------|---------------|------------------|
| 어선의 길이 | 선박직원 | 승무자격 | 주기관
추진력 | 선박직원 | 승무자격 |
| 45미터 미만 | 선장
1등 항해사 |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 1천500킬로
와트 미만 | 기관장
1등 기관사 |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
| 45미터 이상
60미터 미만 | 선장
1등 항해사 |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 1천500킬로
와트 이상 | 기관장
1등 기관사 |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
| 6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 | 선장
1등 항해사 |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 | | |
| 100미터 이상 | 선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 | | |

■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3외2] <개정 2015.3.24.>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의
전파전자급 통신사 승무기준**(제22조의2제1항 관련)

| 선박의
종류 | 항행구역 | | 선박직원 | 승무자격 | |
|---|---------|-----------------|------|--------------------------------|--------------------------------|
| | | | | 무선설비의 2중
설치 및 육상정
비가능 선박 | 무선설비의 2중
설치 및 선상정
비가능 선박 |
| 여객선
(「해운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여객선을
말한다) | 국제항해 | 여객정원
250명 이상 | 통신장 | 2급 통신사 1명 | 1급 통신사 1명 |
| | | 여객정원
250명 미만 | 통신장 | 3급 통신사 1명 | 2급 통신사 1명 |
| | 국내항해 | | 통신장 | 3급 통신사 1명 | 2급 통신사 1명 |
| 화물선 | 국제항해 | | 통신장 | 3급 통신사 1명 | 2급 통신사 1명 |
| | 국내항해 | | 통신장 | 3급 통신사 또는
4급 통신사 1명 | 2급 통신사 1명 |
| 어선 | 500톤 이상 | | 통신장 | 3급 통신사 1명 | 2급 통신사 1명 |
| | 500톤 미만 | | 통신장 | 4급 통신사 1명 | 3급 통신사 1명 |

■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4. 12. 17.>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에서의 선장·1등 항해사·기관장·1등
기관사·운항장·1등 운항사 또는 통신장의 직무수행을 위한**

승무경력(제22조제2항관련)

1. 선장 및 1등 항해사(어선 외의 선박)

| 선박의 크기
(총톤수) | 승무할 직무 |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 |
|-------------------|--------|---|
| 500톤 이상
3천톤 미만 | 선장 | 3년(선장 또는 1등 항해사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2년) 이상 |
| 3천톤 이상 | 선장 | 3년(선장 또는 1등 항해사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2년) 이상 |
| | 1등 항해사 | 1년 이상 |

1의2. 선장 및 1등 항해사(어선)

| 어선의 길이 | 승무할 직무 |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 |
|--------------------|--------|---|
| 24미터 이상
60미터 미만 | 선장 | 1년 이상 |
| 60미터 이상
80미터 미만 | 선장 | 2년(선장 또는 1등 항해사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1년) 이상 |
| | 1등 항해사 | 1년 이상 |
| 80미터 이상 | 선장 | 3년(선장 또는 1등 항해사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2년) 이상 |
| | 1등 항해사 | 1년 이상 |

비고

어선의 "길이"란 「선박안전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어선의 길이를 말한다

2. 기관장·1등 기관사

| 선박의 크기
(주기관 추진력) | 승무할 직무 |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 |
|---------------------|--------|---------------|
| 750킬로와트 미만 | 기관장 | 1년 이상 |

| | | |
|-------------------------|--------|--|
| 750킬로와트 이상
3천킬로와트 미만 | 기관장 | 2년 이상(1등 기관사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1등 기관사 | 1년 이상 |
| 3천킬로와트 이상 | 기관장 | 3년(1등 기관사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2년) 이상 |
| | 1등 기관사 | 1년 이상 |

비고 :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 3천 킬로와트 미만인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어선에 1등 기관사로 승선할 경우 직무수행을 위한 승무 경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통신장(전파통신급에 한함)

| 선박의 크기(총톤수) | 승무할 직무 |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 |
|------------------|--------|---------------|
| 1만톤 이상
2만톤 미만 | 통신장 | 1년 이상 |
| 2만톤 이상 | 통신장 | 2년 이상 |

4. 자동화선박의 선장·운항장·1등 운항사

| 선박의 크기(총톤수) | 승무할 직무 |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 |
|---------------|--------|--|
| 3천톤 이상의 자동화선박 | 선 장 | 3년 이상[선장·1등 항해사 또는 1등 운항사(항해전문)으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운항장 | 3년 이상[운항장·1등 운항사(기관전문)·기관장·1등 기관사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1등 운항사 | 1년6월 이상[2등 운항사·2등 항해사·2등 기관사 이상의 직무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

비 고

운항사의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은 승무한 직무와 전문분야가 같아야 한다.

5. 수면비행선박의 선장·1등 항해사

| 선박의 종류 | 승무할 직무 |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 |
|-----------|--------|---------------|
| 소형 수면비행선박 | 선 장 | 1년 이상 |
| 중형 수면비행선박 | 선 장 | 2년 이상 |
| | 1등 항해사 | 1년 이상 |

비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은 수면비행선박에서의 승무경력을 말한다.

■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0. 8. 1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선박 항행의 안전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가. 선박직원의 면허 또는 승무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이 승무 중에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박직원을 계속 승무시킨 경우 | 법 제31조제2항 제1호 | 150 |
| 나.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제3항 제1호 | 50 |
| 다.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선박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제3항 제2호 | 50 |

| | | |
|--|------------------|-----|
| 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심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31조제2항
제2호 | 150 |
| 마. 법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현장승선실습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현장승선실습 계약을 체결할 때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제1항
제1호 | 360 |
| 바. 법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승선실습 계약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제1항
제2호 | 250 |

■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6] 삭제 <1999.4.7>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 [해양수산부령 제817호, 2026. 9. 1.,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051 - 773 - 57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직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30., 2012. 10. 31.>

제2조(교육) ①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의 과정별 교육대상자·교육내용 및 교육기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8. 9. 17., 2001. 10. 4., 2005. 9. 30., 2012. 10. 31., 2016. 5. 16.>

1. 「선박직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와 「선박직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기사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 취득교육

2.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면허갱신교육

3. 법 제16조에 따른 보수교육

4.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필기시험면제교육

4의2. 영 제13조제6항에 따른 면접시험면제를 위한 교육

5. 영 별표 3 제4호에 따른 소형선박직무교육

② 영 별표 3 제1호의 비고 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운항교육” 및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운전교육”이란 별표 1의 면허취득교육 중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필기시험과목 전부를 면제받아 6급 항해사면허, 6급 기관사면허 또는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이수하여야 하는 면허취득교육을 말한다.<신설 2016. 5. 16.>

③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그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선원법 시행규칙」 제57조제4항에 따른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거나 선원수첩의 관청기사란에 교육이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5. 9. 30., 2012. 10. 31., 2016. 5. 16.>

④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로서 별표 1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는 사람은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의 관할구역에서는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을 말한다) 또는 지정교육기관의 장에게 선원수첩에 교육과정이수사실을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4. 2. 2., 2008. 3. 14., 2012. 10. 31., 2015. 1. 8., 2016. 5. 16.>

제3조(지정교육기관의 지정신청) ①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교육기관기준에 적합한 시설 등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2. 10. 31., 2013. 3. 24.>

1. 해당 교육기관의 연혁·조직 및 운영계획
2. 교육시설·실습선의 현황·실습장비·실습기간 및 실습계획
3. 교직원의 인적사항·자격, 교원별 담당과목 및 담당시간
4. 교육과정별 정원·입학자격,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5. 해당 교육기관의 예산내역
6.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8., 2013. 3. 24.>

[전문개정 2006. 6. 26.]

제4조(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제3조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수급정책·교육기관의 시설·교육과정등을 참작하여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2. 10. 31., 2013. 3. 24.>

제5조(지정내용의 변경신청) ①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8. 7., 2005. 9. 30., 2008. 3. 14., 2011. 2. 18., 2012. 10. 31., 2013. 3. 24.>

1. 지정교육기관지정서
2.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지정내용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개정 2012. 10. 31.>

제5조의2(지정교육기관에 대한 감독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교육기관에 대하여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교육기관기준에 적합한 시설 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5. 16.]

제6조(지정의 해제)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2. 10. 31., 2013. 3. 24., 2016. 5. 16.>

1. 지정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 1의2.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영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기품질평가 결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한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영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

제7조(자동화선박의 설비내역 및 종류인정) ①영 제3조의2에 따라 자동화선박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동화선박의 종류별 인정(변경인정) 신청서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 발급한 해당 선박이 영 별표 1에 따른 자동화선박의 설비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27., 2005. 9. 30., 2007. 11. 23., 2008. 3. 14., 2012. 10. 31., 2015. 1. 8., 2019. 8. 20.>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동화선박의 종류별 인정(변경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2. 10. 31., 2015. 1. 8.>

제8조 삭제 <1998. 9. 17.>

제9조(시험의 시행) 영 제10조에 따른 정기시험, 임시시험 및 상시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개정 2005. 9. 30., 2012. 10. 31.>

1.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은 정기시험의 직종별 등급·시험일시·시험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매년 1월 10일까지 관보 및 주요 일간지에 게재하여 이를 공고(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고를 포함한다)한다.
2. 임시시험은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시행하며, 그 직종별 등급·시험일시·시험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까지 연수원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한다.
3. 연수원장은 상시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 그 직종별 등급·시험일시·시험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 15일 전까지 연수원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10조(시험위원의 위촉 등) ①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17., 2001. 10. 4., 2005. 9. 30., 2012. 10. 31., 2016. 5. 16., 2020. 6. 3.>

1. 지정교육기관에서 선박의 운항관리·기관운전 또는 통신에 관한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전임 교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시험등급 이상의 면허를 받은 사람
 - 가. 3급 항해사 이상, 3급 기관사 이상, 3급 운항사 이상, 2급 통신사 이상 또는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중형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고 3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선박검사관 또는 선박검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시험에 한정한다)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항공운항에 관한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사업용 또는 운송용 항공기 조종사 면허 또는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를 받고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다.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수면비행선박의 설계 또는 제조업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해사에 관한 영어 회화능력을 갖춘 사람(영어면접시험의 경우에 한정한다)

5.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시험에 한정한다)

②연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시험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8. 9. 17., 2012. 10. 31.>

[제목개정 2012. 10. 31.]

제11조(시험의 신청) ①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29., 2012. 10. 31., 2016. 5. 16.>

1. 삭제<2007. 5. 29.>

2. 삭제<2007. 5. 29.>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려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원서에 면제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31., 2016. 5. 16.>

1.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

1의2.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

2.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

3.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

4.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

4의2. 영 제1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

5.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

6. 영 별표 2 제5호의 비고 및 제6호의 비고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

③ 삭제<2012. 10. 31.>

[전문개정 2006. 6. 26.]

제12조(필기시험의 면제 등) ①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에 대해서는 2년의 기간동안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이 제11조제1항

에 따른 응시원서에 그 과목 면제를 포기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모든 과목을 다시 응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0. 31.>

②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일부 면제되는 필기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2. 1.>

1. 6급 항해사 : 항해, 운용 및 전문
2. 6급 기관사 : 기관(1)·기관(2) 및 기관(3)
3. 소형선박 조종사 : 항해, 운용 및 기관

③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에 필기시험과목 전부를 면제받아 면접시험에 응시할 것인지, 필기시험과목 일부를 면제받아 필기시험에 응시할 것인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31.>

④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일부 면제되는 필기시험과목은 법규·영어 및 전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5. 29.]

제13조(합격자 공고) 연수원장은 시험을 시행하여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연수원 홈페이지에 합격자의 명단을 지체없이 공고하고, 합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해기사시험 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17., 2012. 10. 31.>

제14조(면허증의 발급신청)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해기사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선원수첩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으로 교육이수 상황 또는 승무경력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제4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8. 9. 17., 2001. 10. 4., 2005. 9. 30., 2008. 3. 14., 2012. 10. 31., 2013. 3. 24., 2015. 1. 8., 2016. 5. 16.>

1. 「선원법」 제87조에 따른 건강진단서.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가. 선박에 승무 중인 사람: 선박소유자가 발급한 신청인이 승무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선원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고 그 유효기간 내에 있는 사람: 선원수첩

다.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및 색각검사 결과

2. 영 제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2항 전단에 따른 면허취득교육과정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취득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의2. 별표 1의 보수교육 중 다음 각 목의 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가. 레이더시뮬레이션교육

나. 전자해도장치교육

다. 자동충돌예방교육

라. 리더십 및 팀워크교육

마.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

2의3.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기초안전교육 또는 상급안전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3. 영 별표 1의3 제3호에 따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통신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4. 영 제9조에 따라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사진 1매(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것)

6.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해당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와 해당 교육과정 이수증

7.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가. 해당 승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가목의 승무경력 증명서류와 관련된 어선원부등본(어선의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수산업협동조합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로서 그 선박소유자 및 선박제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승무한 선박이 감척(減隻)되거나 폐선된 경우로 한정한다)

8.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응시하려는 면허와 같은 직종, 같은 등급의 면허를 소지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승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0.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해당 승선실습 프로그램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1. 영 별표 2 제5호 비고 및 제6호 비고에 따라 관련 자격증 소지를 이유로 필기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경우: 해당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31., 2016. 5. 16., 2017. 7. 28.>

1. 주민등록표등(초)본 또는 병적증명서(승무경력 증명기간 안에 군에 복무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2. 선박원부(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상선의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해양경찰서장이 발급하는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이하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라 한다)

③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구조종면허 소지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 5. 29., 2008. 3. 14., 2012. 10. 31., 2015. 1. 8.>

1. 동력수상레저기구구조종면허증 사본 1매
2.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것)

[제목개정 2012. 10. 31.]

제15조(면허증의 발급)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발급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29., 2008. 3. 14., 2012. 10. 31., 2015. 1. 8.>

1. 면허번호, 발급일, 유효기간만료일등 면허에 관한 사항
2. 면허를 받는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
3. 시험실시기관의 명칭 및 시험합격일

② 제1항의 해기사면허증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국문, 영문을 포함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 5. 29., 2012. 10. 31.>

[제목개정 2012. 10. 31.]

제16조(면허증의 재발급)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2. 10. 31., 2015. 1. 8., 2021. 6. 30.>

1. 면허증(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위를 기재한 서류(면허증을 잃어버려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1매(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제목개정 2012. 10. 31.]

제17조(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 등)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면허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정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정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2. 10. 31., 2015. 1. 8.>

1. 면허증
2. 변경 또는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목개정 2012. 10. 31.]

제18조(면허의 갱신)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

다. <개정 2001. 10. 4., 2005. 9. 30., 2008. 3. 14., 2012. 10. 31., 2015. 1. 8., 2016. 5. 16., 2023. 10. 30.>

1. 면허증. 다만, 선박에 승무중인 사람은 승무증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2. 법 제7조제3항제1호, 제1호의2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지방 해양수산청장이 선원수첩 또는 제6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으로 교육이수 상황 또는 승무경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영 별표 1의3 제3호에 따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통신사면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4. 「선원법」 제87조에 따른 건강진단서.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 가. 선박에 승무 중인 사람: 선박소유자가 발급한 신청인이 승무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 나. 「선원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고 그 유효기간 내에 있는 사람: 선원 수첩
 - 다.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및 색각검사 결과
 - 라. 선박직원으로 승무하지 않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및 색각검사 결과
5. 사진 1매(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것)
 - ②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면허의 효력을 계속 유지시키려는 사람이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1년 이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할 수 있다. 다만,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1년 이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의 기간에 장기승선 또는 해외체류 등으로 우리나라 이외의 지역에 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1년 전에 면허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1. 10. 4., 2012. 10. 31., 2016. 5. 16.>
 - ③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교육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01. 10. 4., 2012. 10. 31.>
 - ④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소지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갱신신청서에 제14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5. 29., 2008. 3. 14., 2015. 1. 8.>
 - ⑤ 갱신되는 면허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갱신하는 경우 그 면허의 유효기간은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하되, 그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2. 10. 31.>
1. 종전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한 경우: 종전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5년

2. 제1호 외의 경우: 갱신되는 날부터 5년

⑥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16.>

제19조(면허증의 제출) 해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거나 잃어버린 면허증을 발견한 날 또는 하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허증(제2호의 경우에는 잃어버린 면허증, 제4호의 경우에는 갱신하기 전의 면허증)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4., 2005. 9. 30., 2007. 5. 29., 2008. 3. 14., 2012. 10. 31., 2015. 1. 8., 2020. 8. 18.>

1. 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면허증을 잃어버려 면허증을 재발급받은 후에 잃어버린 면허증을 발견한 경우
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3의2. 제14조제3항에 따른 발급신청으로 해기사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제1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선박에 승무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면허를 갱신한 경우

제20조(행정처분의 기준등) ①법 제9조제7항에 따른 해기사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 10. 31., 2020. 8. 18.>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2. 10. 31., 2015. 1. 8., 2020. 8. 18.>

③ 해양경찰청장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영 제4조제1항제3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한정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의 사실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그 한정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신설 2007. 5. 29., 2008. 3. 14., 2012. 10. 31., 2014. 11. 19., 2015. 1. 8., 2017. 7. 28., 2023. 10. 30.>

제20조의2(자료의 유지·관리)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면허의 발급·갱신·취소 등에 관한 자료를 전산화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2. 10. 31., 2015. 1. 8.>

[본조신설 2001. 10. 4.]

제21조(해기품질평가의 실시방법) ①영 제16조의2에 따른 해기품질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 3. 14., 2012. 10. 31., 2013. 3. 24.>

1. 영 제16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대상기관(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내부평가(이하 “내부평가”라 한다)
2.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외부평가(이하 “외부평가”라 한다)

② 평가대상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기품질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해기품질관리체제를 갖추고 제1항에 따른 해기품질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0. 31., 2013. 3. 24.>

제22조(해기품질평가결과의 처리) ①내부평가를 실시한 평가대상기관은 평가실시 후 외부평가를 실시하기 전 1월 이내에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30., 2008. 3. 14., 2013. 3. 24.>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외부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 및 시정요구사항을 해당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제22조의2(외국인해기사의 승무자격증 발급신청 등) ①법 제10조의2제3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승무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해기사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승무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2. 10. 31., 2015. 1. 8., 2026. 4. 9.>

1. 해기사면허증 사본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우리나라 선사와 계약한 근로계약서 사본 1부
4. 제22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기사면접시험 합격증 사본 1부 또는 제22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사법규 교육이수증 사본 1부
5. 제22조의5제1항 각 호의 교육이수증 사본 각 1부
6.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5밀리미터, 세로 4센티미터 5밀리미터의 것)

②제1항에 따라 승무자격증의 발급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승무자격증 발급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무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2. 10. 31., 2015. 1. 8., 2026. 4. 9.>

1. 승무자격증번호, 발급일, 유효기간, 승선선박명 등 승무자격에 관한 사항
2. 승무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국가명, 성명, 생년월일, 여권 및 해기사면허증의 번호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승무자격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6. 4. 9.>

1.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승무자격증
2. 법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승무자격증

④승무자격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외국인해기사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승무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2. 10. 31., 2015. 1. 8., 2026. 4. 9.>

1. 승무자격증(승무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승무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위를 기재한 서류 1부(승무자격증을 잃어버려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5밀리미터, 세로 4센티미터 5밀리미터의 것)

⑤승무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정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의6서식의 승무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정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2. 10. 31., 2015. 1. 8., 2026. 4. 9.>

1. 승무자격증
2. 변경 또는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본조신설 2005. 9. 30.]

[제목개정 2012. 10. 31.]

제22조의3(외국인해기사의 승무자격증의 갱신) ①영 제17조제6항에 따라 승무자격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외국인해기사는 별지 제12호의7서식의 승무자격증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2. 10. 31., 2015. 1. 8., 2026. 4. 9.>

1. 해기사면허증 사본 1부
2. 건강진단서 1부(선박에 승무중인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신청인이 승무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3. 승무자격증(선박에 승무중인 자는 승무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1부
4. 우리나라 선박의 승선경력증명서(갱신하고자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1년 이상 승선한 증명서를 말한다) 1부
5.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5밀리미터, 세로 4센티미터 5밀리미터의 것)

②갱신되는 승무자격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외국인해기사가 소지하고 있는 해기사면허증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5. 9. 30.]

제22조의4(외국인해기사의 해기사면접시험) ①외국인해기사가 승무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8서식의 외국인해기사 면접시험 응시원서에 해기사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연수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31., 2026. 4. 9.>

②연수원장은 해기사면접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합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31.>

[본조신설 2005. 9. 30.]

제22조의5(외국인해기사의 시험 및 교육·훈련의 면제) ①영 제1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외국인해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기사필기시험의 해당 과목 및 해당 교육·훈련을 면제한다. <개정 2012. 10. 31.>

1. 기초 및 상급안전교육
2. 레이더시뮬레이션 교육
3. 레이더 알파교육
4. 전자해도장치 교육
5. 선교자원관리 교육
6. 기관실자원관리 교육
7. 직무교육(승선할 선박의 선박직원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말한다)

②제22조의4제1항에 불구하고 외국인해기사가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해사법규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기사면접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2. 10. 31.>

[본조신설 2005. 9. 30.]

제22조의6(외국인해기사의 교육기관 지정절차) ①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해기사 교육을 실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9서식의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지정(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26., 2012. 10. 31., 2026. 4. 9.>

1. 해당 교육기관의 연혁·조직 및 운영계획
2. 교육시설 현황
3. 교직원의 인적사항·자격, 교직원별 담당과목 및 담당시간
4.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5. 해당 교육기관의 예산내역
6.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 6. 26., 2011. 2. 18., 2013. 3. 24.>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가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2호의10서식의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지정(변경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 6. 26., 2008. 3. 14., 2012. 10. 31., 2013. 3. 24., 2026. 4. 9.>

④제2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은 해당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의11서식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6. 6. 26., 2012. 10. 31., 2026. 4. 9.>

⑤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9서식의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지정(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6. 26., 2008. 3. 14., 2012. 10. 31., 2013. 3. 24., 2026. 4. 9.>

1.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지정서
2. 변경사유를 적은 서류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6. 6. 26., 2008. 3. 14., 2013. 3. 24.>

1. 지정된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법·영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

⑦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해사법규교육의 내용·시간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지정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6. 6. 26., 2008. 3. 14., 2012. 10. 31., 2013. 3. 24.>

[본조신설 2005. 9. 30.]

제23조(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 ①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2. 10. 31., 2013. 3. 24.>

1. 선박의 구조나 설비가 특수한 경우
 2. 특정한 항로나 수역만을 항행하는 경우
 3. 외국의 영토에 기지를 두고 연안항해를 하는 경우
 4. 외국선박의 경우
 5. 항행예정시간이 4시간 이내인 국내항간을 긴급히 항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법 제13조에 따라 선박직원의 승무기준 완화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선박직원 승무기준 완화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2. 10. 31., 2013. 3. 24., 2015. 1. 8.>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승무기준 완화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무기준 완화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선박직원 승무기준 완화허가서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2. 10. 31., 2013. 3. 24., 2015. 1. 8.>

제24조 삭제 <1999. 3. 27.>

제25조(수수료) ①법 제23조제3항 및 법 제26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 10. 31.>

-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수원이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31.>
- ③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연수원장은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4. 8. 7., 2008. 3. 14., 2012. 10. 31., 2015. 1. 8.>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연수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해당 시험일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제4호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100분의 50

부칙 <제55호, 1998. 4. 23.>

제2조 (교육과정 이수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수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이 규칙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이수중인 것을 포함한다)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표의 왼쪽란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은 오른쪽란의 이 규칙에 의한 교육과정으로 본다.

| | | | | | |
|-----------------|--|--|---------------|--|--|
|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 | | 이 규칙에 의한 교육과정 | | |
| 통신사의 면허전환교육과정 | | | 면허취득교육과정 | | |
| 또는 교류교육과정 | | | | | |
| 레이다관측교육과정 | | | 레이더시뮬레이션교육과정 | | |
| 유탱커교육과정 | | | 탱커기초교육과정 및 | | |
| | | | 유조선직무교육과정 | | |

부칙 <제133호, 1999. 8. 24.>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선박직원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호중 “ 해난심판법 ” 을 “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 로 한다.

⑧내지 ⑮생략

부칙 <제205호, 2001. 10.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호, 2004. 2. 2.>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선박직원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 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장 ” 을 “ 해양수산사무소장 ” 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277호, 2004. 8. 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항질서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호, 2005. 9. 30.>

이 규칙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호, 2006. 6. 26.> (행정정보 공유 및 문서감축을 위한 「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2호, 2007. 5. 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안선 직무교육 이수에 따른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면허취득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자는 별표 1의 비고란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의 비고란 제3호가목에 따라 연안선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3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90호,2007. 11. 23.>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안전기술원 또는 동법 제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급법인 ”을 “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으로 한다.

⑤ 부터 ⑭ 까지 생략

제24조 생략

부칙 <제4호,2008. 3. 14.>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호,2008. 12. 31.>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중 “ 해양수산부장관 ”을 “ 국토해양부장관 ”으로 한다.

⑪ 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117호,2009. 4.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2호,2011. 2.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영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란의 개정 규정 중 수면비행선박 모의조종훈련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4호, 2012. 10.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예인선 직무교육에 관한 부분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의 신청 및 면허증의 발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공고되는 시험에 합격하여 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허의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면허를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탱커기초교육의 교육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탱커기초교육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실시되는 탱커기초교육부터 적용한다.

제5조(유조선 직무교육 등의 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유조선 직무교육, 액화가스탱커 직무교육 및 케미컬탱커 직무교육에 관한 부분은 각각 이 법 시행 후 실시되는 해당 교육부터 적용한다.

제6조(소형선박 조종사면허 취득교육 또는 소형선박 직무교육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비고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실시되는 소형선박 조종사면허 취득교육 또는 소형선박 직무교육부터 적용한다.

제7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이 규칙 시행 후 공고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시험합격증명서의 신청, 면허증의 발급(재발급) 및 갱신 신청, 면허증의 기재사항변경(정정) 신청, 승무자격증의 발급(재발급) 및 갱신 신청, 승무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정정) 신청 수수료는 이 규칙 시행 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선교자원관리교육, 기관실자원관리교육 및 전자해도장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지정교육기관에서 선교자원관리교육, 기관실자원관리교육 및 전자해도장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기사 면허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교자원관리교육, 기관실자원관리교육 및 전자해도장치교육 중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9조(탱커기초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탱커기초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탱커기초교육과 액화가스탱커기초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호, 2013. 3. 24.>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 까지 생략

1*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14조제1항제7호나목, 제21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2조의6제2항·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23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별표 1 비고의 제8호·제10호, 별지 제1호서식 서명란 및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7호나목, 별지 제12호의8서식 서명란 및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의9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서명란 및 처리절차란, 별지 제1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63호,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호, 2014. 11. 19.>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및 별표 2 제2호사목의 위반사항란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127호, 2014. 12. 31.> (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객선직무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연안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여객선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하고 있는 사람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여객선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34호, 2015. 1. 8.>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의 관할구역에서는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을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의 관할구역에서는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제3항, 제20조의2,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제2호 마목,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 서류란 <발급신청> 제4호·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제3쪽, 같은 서식 제4쪽 유의사항란 제4호,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의4서식 3쪽, 같은 서식 4쪽 주의사항란 제4호, 별지 제12호의5서식, 별지 제12호의6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의3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제1쪽·제3쪽, 별지 제12호의4서식 1쪽 및 3쪽 중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를 각각 “REGIONAL MARITIME AFFAIRS & FISHERIES ADMINISTRATION”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의4서식 4쪽 주의사항(Remarks)란 중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를 “Regional Maritime Affairs & Fisheries Administration”으로 한다.

⑤부터1(까지 생략

부칙 <제190호, 2016. 5.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7. 2. 1.>

1. 별표 1 비고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9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되는 날
2. 별표 1의 선교자원관리교육란, 기관실자원관리교육란,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란,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란의 개정규정: 2017년 1월 1일
3. 별표 1의 면허취득교육란, 원양선 직무교육란 및 연안선 직무교육란의 개정규정: 2019년 1월 1일
4. 별표 1의 고전압 직무교육란의 개정규정: 2017년 2월 1일

제2조(면허취득교육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면허취득교육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수교육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의 보수교육란 중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과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에 관한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출항하는 내항여객선 또는 항해선인 상선에 승무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내항여객선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하고 있는 사람은 별표 1의 보수교육란 중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과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에 관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2. 1.>

② 별표 1 보수교육의 직무교육란 중 원양선 직무교육 및 연안선 직무교육에 관한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출항하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 또는 연안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③ 별표 1 보수교육의 직무교육란 중 고전압 직무교육의 개정규정은 해당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부칙 제1조제4호에 따른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출항하는 1,000볼트 초과 고전압을 발전, 배전 또는 변압하는 설비를 갖춘 항해선에 승무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7. 2. 1.>

제4조(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과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 신설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종전의 별표 1의 보수교육 중 선교자원관리교육, 기관실자원관리교육 또는 여객선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별표 1 보수교육의 개정규정에 따른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선교자원관리교육, 기관실자원관리교육 또는 여객선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항해선 또는 내항여객선에서 선장, 1등 항해사, 기관장, 1등 기관사, 운항장 또는 1등 운항사로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은 별표 1의 보수교육란의 개정규정에 따른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과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2. 1.>

[제목개정 2017. 2. 1.]

제5조(필기시험면제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필기시험면제교육을 받은 사람은 별표 1의 필기시험면제교육란의 개정규정에 따른 필기시험면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교육과정 면제제도 등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이 규칙 시행 일 전에 종전의 별표 1 비고 제2호에 따라 면허취득교육을 받은 사람은 별표 1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면허취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종전의 별표 1 비고 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9호에 따라 각각 연안선 직무교육, 면허갱신 교육 또는 원양선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는 사람은 별표 1 비고 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별표 1에 따른 연안선 직무교육, 면허갱신 교육 또는 원양선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예인선에 승선 중인 기관사가 항해사로 전직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종전의 별표 1 비고 제12호에 따라 예인선 직무교육을 면제한다.

④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 비고 제13호에 따라 같은 표의 해양오염방지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별표 1 비고 제1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선박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7조(해기사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발급된 해기사면허증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해기사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출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보수교육란에 따른 교육 중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해기사면허증에 적어야 한다.

1. 레이더시뮬레이션교육
2. 전자해도장치교육
3. 자동충돌예방교육
4.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
5.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해기사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을 위한 절차와 방법은 제 17조에 따른다.

제8조(승무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지 제12호의 4서식에 따라 발급된 승무자격증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승무자격증 기재사항 중 “REGIO-NAL MARITIME AFFAIRS & FISHERIES ADMINISTRATION”은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로, “6개월”은 “12개월”로, “6 months”는 “12 months”로 본다.

부칙 <제217호, 2017. 1. 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23호, 2017.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필기시험과목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되는 6급 향해사 필기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전압 운용교육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보수교육의 기술교육의 고전압 운용교육란의 개정규정은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출항하는 1,000볼트 초과 고전압을 발전, 배전 또는 변압하는 설비를 갖춘 항해선에 승무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전압 운용교육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표 1 보수교육의 기술교육의 고전압 운용교육란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전압 운용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지정교육기관에서 고전압 운용교육을 이수한 사람
2. 이 규칙 시행 당시 1,000볼트 초과 고전압을 발전, 배전 또는 변압하는 설비를 갖춘 항해선에서 최근 5년 이내 6개월 이상 승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이 규칙 시행 당시 1,000볼트 초과 고전압을 발전, 배전 또는 변압하는 설비를 갖춘 항해선에서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승무경력이 있는 사람

부칙 <제238호, 2017. 6.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호, 2017. 7. 28.>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호, 2018. 10.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 제190호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 면허취득교육의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초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지정교육기관에서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초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초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2018년 7월 1일 전에 극지해역 또는 이와 유사하게 얼음으로 덮인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서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초교육란에 관한 개정규정을 2020년 7월 1일 이후 선박에 승무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8년 7월 1일 전 5년 이내에 극지해역 또는 이와 유사하게 얼음으로 덮인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서 3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초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3조(극지해역 운항선박 직무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지정교육기관에서 극지해역 운항선박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극지해역 운항선박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2018년 7월 1일 전에 극지해역 또는 이와 유사하게 얼음으로 덮인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서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극지해역 운항선박 직무교육란에 관한 개정규정을 2020년 7월 1일 이후 선박에 승무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극지해역 운항선박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2018년 7월 1일 전 5년 이내에 극지해역 또는 이와 유사하게 얼음으로 덮인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서 선장 또는 1등 항해사로 3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2018년 7월 1일 전 5년 이내에 극지해역 또는 이와 유사하게 얼음으로 덮인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서 선장 또는 1등 항해사로 2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초교육을 이수한 사람

부칙 <제366호, 2019. 8. 20.>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같은 법”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박안전법」”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371호, 2019. 1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2호,2020. 4. 6.>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4호,2020. 6. 3.>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다목 중 “ 「해사안전법」 제36조의2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또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 를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 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423호,2020. 8.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6호,2021. 6. 3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9호,2023. 10.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2호,2026. 4.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7호,2026. 7. 13.>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7호,2026. 9.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6. 9. 1.>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교육내용 및 교육기간(제2조제1항 관련)

| 교육과정 | 교육대상자 | 교육내용 | 교육기간 |
|----------------------|---|---------------------------|------------------|
| 면허취득
교육 |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또는 전자기관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항해선인 상선에 승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선박의 운항, 기관의 운전 또는 전자기관 관리 | 10일 교육과 6개월 원격교육 |
| | 3급 항해사 또는 3급 기관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항해선이 아닌 상선에 승무하거나 항해선인 어선에 승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5일 |
| | 1급 통신사부터 3급 통신사(전파통신급 또는 전파전자급)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 통신직무 | 10일 |
| | 4급 항해사 또는 4급 기관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항해선인 상선에 승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 5일 교육과 4개월 원격교육 |
| | 4급 항해사 또는 4급 기관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항해선이 아닌 상선에 승무하거나 항해선인 어선에 승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3일 |
| | 4급 통신사(전파통신급 또는 전파전자급)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 통신직무 | 5일 |
| | 5급 항해사 또는 5급 기관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항해선인 상선에 승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 3일 교육과 2개월 원격교육 |
| | 5급 항해사 또는 5급 기관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항해선이 아닌 상선에 승무하거나 항해선인 어선에 승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3일 |
| | 6급 항해사 또는 6급 기관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항해선인 상선에 승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 2일 교육과 1개월 원격교육 |
| | 6급 항해사 또는 6급 기관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항해선인 어선에 승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2일 |
| |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승무경력 없이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 선박의 운항 및 기관의 운전 | 3일 |
| |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필기시험과목 전부를 면제받아 6급 항해사면허, 6급 기관사면허 또는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 3일 |
|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필기시험과목 일부를 면제받아 6급 항해사면허, 6급 기관사면허 또는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 2일 |
| | 3급 항해사 이상, 3급 기관사 이상, 3급 운항사 이상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 선박의 운항관리 또는 기관의 운전 | 10일 |
| | 4급 항해사 이하, 4급 기관사 이하, 4급 운항사의 면허 또는 통신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 선박의 운항관리 또는 기관의 운전 | 5일 |

| | | | | | |
|----------|---------------------------------------|--|---|--|-----|
| |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2급 이하의 항해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 선박의 운항 | 10일 | |
| | 영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한정면허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사람 | 수면비행선박 모의조종훈련 | 35시간 | |
| | | | 수면비행선박 실선 실습훈련 | 60시간 | |
| |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한정면허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사람 | 수면비행선박 모의조종훈련 | 50시간 | |
| | | 수면비행선박 실선 실습훈련 | 100시간 | | |
| | 영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상선면허를 가지고 동급 이하의 어선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어선면허를 가지고 동급 이하의 상선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 선박의 운항 및 영어 | 7일 | |
| 면허 갱신 교육 |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 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 | 3급 항해사 이상, 3급 기관사 이상, 3급 운항사 이상,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 | 선박의 운항관리 또는 기관의 운전 | 3일 | |
| | | 4급 항해사 이하, 4급 기관사 이하, 4급 운항사,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 | 선박의 운항관리 또는 기관의 운전 | 2일 | |
| | | 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 | 통신직무 또는 소형선박의 운항관리 | 1일 | |
| 보수 교육 | 기술교육 | 운항사 교육 |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운항사 면허를 받고 최초로 운항사의 직무를 행하려는 사람 | 선박의 운항관리 | 10일 |
| | | 레이더시뮬레이션교육 | 1급 항해사부터 6급 항해사까지의 면허, 1급 운항사(항해전문)부터 4급 운항사(항해전문)까지의 면허 또는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가지고 레이더가 설치된 항해선에 최초로 승무하려는 사람 | 레이더관측·레이더기초지식 및 레이더항법 | 5일 |
| | | | 통신사면허를 소지하고 통신사 이상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 중 1급 항해사부터 6급 항해사까지의 면허, 1급 운항사(항해전문)부터 4급 운항사(항해전문)까지의 면허 또는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가지고 레이더가 설치된 항해선에 최초로 승무하려는 사람 | 레이더 정보·분석 | 2일 |
| | |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 | 최초로 내항여객선 또는 항해선인 상선에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또는 전자기관사로 승무하려는 사람 | 선내 조직의 구성원으로 인적 자원의 효과적인 관리와 운용에 관한 교육 | 3일 |
| | | 고전압 응용교육 | 1,000볼트 초과 고전압을 발전, 배전 또는 변압하는 설비를 갖춘 항해선에 기관사, 운항사(기관전문) 또는 전자기관사로 승무하려는 사람 | 고전압 설비의 개요 및 작업안전에 관한 교육 | 1일 |
| | | 전자해도장치교육 | 1급 항해사부터 6급 항해사까지의 면허 또는 1급 운항사(항해전문)부터 4급 운항사(항해전문)까지의 면허를 가지고 전자해도장치 | 전자해도장치에 관한 지식과 활용 능력 배양 | 3일 |

| | | | | |
|--------------------------|---------------------------|--|---|-----------------|
| | | (ECDIS)가 설치된 여객선 또는 항해선인 상선에 최초로 승무하려는 사람 | | |
| | 자 동 충 돌
예 방 교 육 | 1급 항해사부터 6급 항해사까지의 면허 또는 1급 운항사(항해전문)부터 4급 운항사(항해전문)까지의 면허를 가지고 자동충돌예방장치가 설치된 항해선인 상선에 최초로 승무하려는 사람 | 자동충돌예방장치에 관한 지식과 시뮬레이션 훈련 | 3일 |
| 안전
및
해양오염
방지 교육 | 탱 커 기 초
교 육 | 「선원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최초로 유조선이나 케미컬탱커에서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로 승무하려는 사람(「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탱커교육 이수자는 제외한다) | 화물의 특성·특성·위험, 위험통제, 인명보호, 오염방지절차 | 3일 |
| | 액 화 가 스
탱 커 기 초
교 육 | 최초로 액화가스탱커에 항해사, 기관사 또는 운항사로 승무하려는 사람(「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탱커교육 이수자는 제외한다) | 화물의 특성·특성·위험, 위험통제, 인명보호, 오염방지절차 | 3일 |
| | 해 양 오 염
방 지
교 육 | 항해선에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승무하려는 사람 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을 유지하려는 사람 | 해양환경오염방지에 관한 교육 | 3일(유지하려는 경우 2일) |
| | 극지해역 운
항선박 기초
교육 |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선장 또는 항해사로 승무하려는 사람 | 극지해역에서 선박의 운항에 관한 교육 | 4일 |
| | 가스연료 추
진선박 기
초교육 | 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안전에 대한 국제기준(이하 "가스연료추진선박 국제기준"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선박에 항해사, 통신장으로 승무하려는 사람 또는 해당 선박에 선장, 기관장, 기관사, 운항장, 운항사, 전자기관사로 승무하기 위해 가스연료추진선박 직무교육을 이수하려는 사람(「선원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 따른 액화가스탱커 승무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은 제외한다) | 가스 및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한 교육 | 2일 |
| 직무교육 | 유 조 선
직 무 교 육 | 탱커기초교육을 이수하고, 유조선에 선장, 1등 항해사, 기관장, 1등 기관사, 운항장 또는 1등 운항사로 승무하려는 사람 | 안전규칙, 실무지침, 유조선 구조, 화물의 특성, 설비 보수관리, 비상절차 | 5일 |
| | 액 화 가 스
탱 커
직 무 교 육 | 액화가스탱커기초교육을 이수하고, 액화가스탱커에 선장, 1등 항해사, 기관장, 1등 기관사, 운항장 또는 1등 운항사로 승무하려는 사람 | 안전규칙, 실무지침, 화학·물리학, 오염방지절차, 화물취급절차, 선내 작업절차, 비상절차 | 5일 |
| | 케 미 칼
탱 커
직 무 교 육 | 탱커기초교육을 이수하고, 케미컬탱커에 선장, 1등 항해사, 기관장, 1등 기관사, 운항장 또는 1등 운항사로 승무하려는 사람 | 안전규칙, 실무지침, 화물 특성, 선내 작업절차, 설비보수 관리, 비상절차 | 5일 |

| | | | | |
|--|-------------------------------|---|---------------------------------------|--|
| | 원 양 선
직 무 교 육 |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선장, 1등 항해사, 기관장, 1등 기관사, 운항장, 1등 운항사 또는 통신장으로 승무하려는 사람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 제2장제2조 또는 제3장제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 선박의 운항관리, 기관의 운전 또는 통신 직무 | 5일(어선 또는 통신장의 경우에는 3일) |
| | |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선장, 1등 항해사, 기관장, 1등 기관사, 운항장, 1등 운항사 또는 통신장으로 승무하려는 사람 (국제협약 제2장제2조 또는 제3장제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으로 한정한다) | 선박의 운항관리, 기관의 운전 또는 통신 직무 | 5일 교육과 3개월 원격교육 (어선 또는 통신장의 경우에는 3일) |
| | 연 안 선
직 무 교 육 |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연안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톤 이상(어선의 경우에는 30톤 이상)선박에 선장, 기관장, 운항장 또는 통신장(200톤 이상 선박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승무하려는 사람(국제협약 제2장제3조 또는 제3장제3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 선박의 운항관리, 기관의 운전 또는 통신 직무 | 3일(어선 또는 통신장의 경우에는 2일, 30톤 미만 상선의 경우에는 1일) |
| | |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연안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톤 이상(어선의 경우에는 30톤 이상)선박에 선장, 기관장, 운항장 또는 통신장(200톤 이상 선박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승무하려는 사람(국제협약 제2장제3조 또는 제3장제3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으로 한정한다) | 선박의 운항관리, 기관의 운전 또는 통신 직무 | 3일 교육과 1개월 원격교육 (어선 또는 통신장의 경우에는 2일, 30톤 미만 상선의 경우에는 1일) |
| | 예 인 선
직 무 교 육 | 최초로 예인선에 선장, 운항장, 항해사 또는 운항사로 승무하려는 사람 | 선박운항 관리를 위한 모의운항시뮬레이션 | 2일 |
| | 여 객 선
직 무 교 육 |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연안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여객선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려는 사람 | 선내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에 관한 교육 | 3일 |
| | 리 더 십 및
관 리 기 술
직 무 교 육 | 내항여객선 또는 항해선인 상선에 선장, 1등 항해사, 기관장, 1등 기관사, 운항장 또는 1등 운항사로 승무하려는 사람 | 선내 조직의 관리자로 인적 자원의 효과적인 관리와 운용에 관한 교육 | 3일 |
| | 고 전 압 직
무 교 육 | 1,000볼트 초과 고전압을 발전, 배전 또는 변압하는 설비를 갖춘 항해선에 기관장, 1등 기관사, 운항장(기관전문) 또는 1등 운항사(기관전문)로 승무하려는 사람 | 고전압 설비의 안전관리 및 운용에 관한 교육 | 3일 |
| | 극지해역 운 |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초교육을 이수하고, 극지해 | 극지해역에서 선박 | 4일 |

| | | | | |
|--------------------|---|---|---|-----|
| | 항선박 직무교육 | 역 또는 이와 유사하게 업으로 났인 해역(이하 "극지해역등"이라 한다)에서 선장 또는 항해사로 2개월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선장 또는 1등 항해사로 승무하려는 사람 | 의 운항 관리에 관한 교육 | |
| | |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초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선장 또는 1등 항해사로 승무하려는 사람 | 극지해역에서 선박의 운항 관리에 관한 교육 | 4일 |
| | |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초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선장 또는 1등 항해사로 승무(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선장 또는 1등 항해사로서의 승무는 제외한다) | 극지해역등을 운항하는 선박에 선장 또는 1등 항해사로 승무(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선장 또는 1등 항해사로서의 승무는 제외한다) | 2개월 |
| | 가스연료추진선박 직무교육 | 가스연료추진선박 국제기준이 적용되는 선박에 선장, 기관장, 기관사, 운항장, 운항사, 전자기관사로 승무하려는 사람으로서, 가스연료추진선박 기초교육을 이수했거나 「선원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 따른 액화가스탱커 승무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선원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가스 및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운항 관리에 관한 교육 | 3일 |
| 필 기 시 험
면 제 교 육 |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 받으려는 사람 | 2급 항해사면허, 2급 기관사면허, 2급 운항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 필기시험 관련과목 | 20일 |
| | | 3급 항해사면허, 3급 기관사면허, 3급 운항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 필기시험 관련과목 | 15일 |
| | | 4급 또는 5급 항해사면허, 4급 또는 5급 기관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 필기시험 관련과목 | 10일 |
| 면 집 시 험
면 제 교 육 | 영 제13조제6항에 따라 면집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 | | 면집시험 관련과목 | 1일 |
| 소 형 선 박
직 무 교 육 | 영 별표 3 제4호에 따라 소형선박의 선장 및 기관장의 직무를 겸직하려는 사람 | | 소형선박의 운항 또는 소형선박의 기관운전 | 3일 |

비고 :

1. 2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1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과목에 해당하는 교육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삭제 <2016. 5. 16.>
3. 원양선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직종의 연안선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3의2. 운항사 면허갱신 교육대상자의 경우 항해전공은 선박의 운항 관리에 해당하는 면허갱신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기관전공은 기관의 운전해당하는 면허갱신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4. 삭제 <2016. 5. 16.>
5. 수면비행선박 모의조종훈련은 수면비행선박 실선 실습훈련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다.
6. 표면효과전용선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위 표에 따른 교육과정 외에 35시간의 수면비행선박 운항관리 교육과정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면비행선박 실선 실습훈련 교육기간을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

7. 비사업용조종사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를 소지한 사람가 중형 수면 비행선박 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2분의 1이내의 범위에서 교육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8. 국제협약에서 정한 교육과정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위 표에서 정하는 교육과정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통 협약 당사국에서 이수한 경우에는 위 표에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9. 삭제 <2016. 5. 16.>
10. 위 표에서 "원격교육"이란 통신, 인터넷 등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11. 위 표에서 "항해선"이란 「선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 11의2. 위 표에서 "항해선인 상선"이란 항해선 중에서 어선을 제외한 선박을 말한다.
12. 위 표에서 "내항여객선"이란 「해운법」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또는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을 말한다.
13.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선박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위 표의 해양오염방지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4. 통신사의 원양선 직무교육, 연안선 직무교육 또는 면허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접시험 면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5. 통신장으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원양선 직무교육(통신 직무 교육으로 한정한다)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6.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 또는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여객선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7. 위 표에서 "극지해역"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남극해역 및 북극해역을 말한다.
18. 극지해역 운항선박 직무교육의 교육대상자 중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초교육을 받은 후 극지해역통에서의 2개월 이상 승무경력 없이 극지해역 운항선박 직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극지해역에서 선박의 운항 관리에 관한 교육을 먼저 받은 후 그 교육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2개월의 승무를 마쳐야 한다.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3. 10. 30.>

행정처분의 기준(제20조제1항 관련)**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정지처분기간에 각각의 정지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가중할 수 있되,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회수 및 위반의 정도 등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면허취소인 경우(법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는 1년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인명 또는 재산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기사 직무를 모범적으로 해온 사실이 인정된 경우
-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에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가.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승무한 때 | 법 제9조 제1항제1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나.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는 때에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선박 안에 비치하지 아니한 때 | 법 제9조 제1항제2호 | 경고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 다.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한 때 | 법 제9조 제1항제3호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1년 | 면허 취소 |
| 라. 선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비행(非行)이 있거나 인명(人命)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양환경보전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 법 제9조 제1항제4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1년 | 면허 취소 |
| 마. 법 제9조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 법 제9조 | 업무정지 | 업무정지 | 업무정지 |

| | | | | |
|--|--------------|----------|------|-----|
| 업무정지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기사면허증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때 | 제1항제5호 | 1개월 | 2개월 | 4개월 |
| 바. 업무정지기간 중에 승무한 때 | 법 제9조 제1항제6호 | 면허 취소 | — | — |
| 사. 「해사안전법」 제4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 법 제9조 제3항 | | | |
| 1)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 | | — |
| 가)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 | 면허취소 | — | — |
| 나) 그 외의 경우 | | 업무정지 6개월 | 면허취소 | — |
|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 | 면허취소 | — | — |
| 3) 측정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 면허취소 | — | — |
| 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 법 제9조 제2항 | 면허 취소 | — | — |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6. 5. 16.>

수수료(제25조제1항 관련)

| 구 분 | | 금 액 |
|------------------------------|--|--------|
| 자동화선박의 종류별 인정(변경인정)의 신청 | | 5천원 |
| 필 기 시 험
또 는 면접
시험의 응 시 | 1급(항해사·기관사·운항사·통신사)
2급(항해사·기관사·운항사·통신사) | 1만 5천원 |
| | 3급(항해사·기관사·운항사·통신사)
4급(항해사·기관사·운항사·통신사) | 1만 4천원 |
| | 5급(항해사·기관사)
6급(항해사·기관사) | 1만 3천원 |
| | 전자기관사 | 1만 4천원 |
| | 소형선박 조종사 | 1만원 |
|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1만 4천원 |
|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1만 4천원 |
| | 시험합격증명서의 신청 | 무료 |
| | 면허증의 발급(재발급) 및 갱신 신청 | 무료 |
| | 면허증의 기재사항변경(정정) 신청 | 무료 |
| | 승무자격증의 발급(재발급) 및 갱신 신청 | 무료 |
| | 승무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정정) 신청 | 무료 |

* 비 고

1. 1급이나 2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 또는 통신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의 수수료를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2. 소형선박 조종사의 시험 등 실기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에 필요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3.24>

지정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0일 |
| 교육기관명 |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교육기관의 장 | | | |
| 교육과정 | 직 종 | 정 원 | 교육기간 |
| | | | 년 월(실습 월) |
| | | | 년 월(실습 월) |
| | | | 년 월(실습 월)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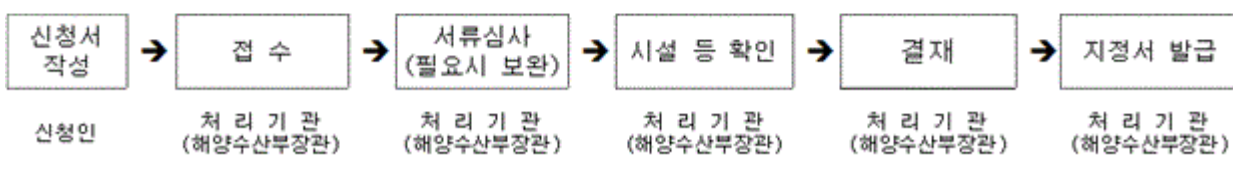
년 월 일

교육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지정신청의 경우
가. 해당 교육기관의 연혁·조직 및 운영계획
나. 교육시설, 실습선의 현황, 실습장비, 실습기간 및 실습계획
다. 교직원의 인적 사항·자격·교원별 담당과목 및 담당 시간
라. 교육과정별 정원·입학자격·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마. 해당 교육기관의 예산 내역
바.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지정 신청의 경우
가. 지정교육기관지정서
나. 변경사유를 적은 서류 | 수수로
없음 |
|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지정교육기관 지정신청을 신청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3.24>

지정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서

| | | | |
|---------|-----|-----|---------------------|
| 교육기관명 | | | |
| 주소 | | | |
| 교육기관의 장 | | | |
| 교육과정 | 직 종 | 정 원 | 교육기간 |
| | | | 년 월(실습 월) |
| | | | 년 월(실습 월) |
| | | | 년 월(실습 월) |
| 지정조건 | | |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210mm × 297mm [백상지 120g/m²]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8.>

자동화선박의 종류별 인정(변경인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신청인 | 성명 | | |
| | 주소 | | |
| 선박명 | | 선박번호 | |
| 선적항 | | 선종 | |
| 항행구역 | | | |
| 총톤수 | | 주기관출력(kW) | |
| 자동화선박의 종류 | 제()종 자동화선박 | | |
| 자동운항설비 내역
(세부내역 별첨) | | |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자동화선박으로 인정(변경인정) 받고자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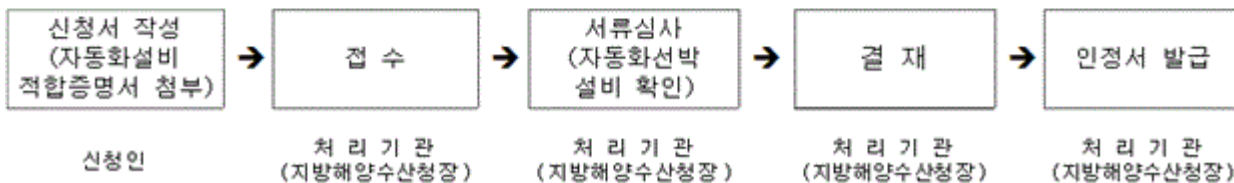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자동화선박의 설비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수수료
5천원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8.>

자동차선박의 종류별 인정(변경인정)서

| | | | | | | |
|-----------------------|-----|--|-----|--|---------------|--|
| 신 청 인 | 주 소 | | | | | |
| | 성 명 | | | | | |
| 선박내역 | 선 명 | | 국 적 | | 총 톤 수 | |
| | 선적항 | | 선 종 | | 주기관출
력(kW) | |
| 인정(변경인정)
등 급 | | | | | | |
| 인정(변경인정)
조 건 | | | | | | |
| 자동운항설비내역
(세부내역 별첨) | | | | | | |
| 비 고 | | | | | |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선박임을 인정(변경인정)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5. 16.>

응시원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 쪽)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 시험 구분
(년도 회) | []정기 []임시 []상시 | 응시직종별 등급 | 응시지역 |
| | []필기 []면접 []실기 | 면허발급희망청 | |
| 응시면허 | []항해사([]상선 []어선) []기관사 []운항사([]항해·[]기관) []소형선박 조종사
[]교류 ([]상선 []어선) []통신사([]전파통신급·[]전파전자급)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소형·[]중형) []전자기관사 | | |
| 성명 | | 생년월일 | |
| 주소 | (휴대폰) | (전화번호:)
(e-mail) | |
| 학력 | 지정 교육기관출신별 | 학교(원) 과(과정)
([]졸업 []재학 []수료) | 사 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cm 세로 4cm의 것 |
| | 실습기간 | 해상 개월, 육상 개월 | |
| 소지면허증 | 명칭 | (번호:) | 발급일 |
| | 면허 | []상선 []어선 선종 | 항해구역 |
| 필기시험면제 | 구분 | []필기시험 전부 면제 []필기시험 일부과목 면제 | |
| | 사유 | (번호:) “뒷면 참조 면제 사유 해당번호를 기재” | |
| 과목합격 | 구분 | []과목합격 이력을 포기하고 전과목 응시를 선택함 | |
| 면제포기 | 과목명 | “뒷면 참조 유의사항 확인” |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귀하

기재요령 “※” 표시한 곳은 적지 마십시오.

-----자-----르-----는-----선-----

| | | | |
|---------|--------------|-------|-------|
| ※ 응시번호 | 응시표 | | |
| | (년도 회 해기사시험) | | |
| 성명 | 생년월일 | | |
| 응시직종별등급 | 시험구분 | []필기 | []면접 |
| | | 년 | 월 일 |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직인

210mm × 297mm [백상지 120g/m²]

(뒤 쪽)

| 필기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유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유로 필기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하고 선택적으로 시험에 응시함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며, 본인의 귀책사유로 시험 합격 유효기간 이내에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의 불비로 인해 면허발급이 거부되는 경우에 대하여도 체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체크 |
| 1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 13조제2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면접시험에 응시하고자 함.
(면접시험에 응시하고 면허 발급 시 면제 관련 증빙서류는 본인의 책임 하에 제출 할 것을 확인함) | |
| 2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 13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 전부를 면제받고 면접시험에 응시하고자 함.
(면접시험에 응시하고 면허 발급 시 면제 관련 증빙서류는 본인의 책임 하에 제출 할 것을 확인함) | |
| 3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 13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 일부를 면제받고 일부 과목 필기시험만 응시하고자 함.
(필기시험 일부과목만 응시하고 면허 발급 시 면제 관련 증빙서류는 본인의 책임 하에 제출 할 것을 확인함) | |
| 4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 14조제1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면접시험으로 면허를 재취득하고자 함.
(면접시험에 응시하고 면허 발급 시 면제 관련 증빙서류는 본인의 책임 하에 제출 할 것을 확인함) | |
| 5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 14조제3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 일부를 면제받고 일부 과목 필기시험만 응시하고자 함.
- 면제과목: 법규, 영어, 전문 - 응시과목: 항해, 운용
(필기시험 일부과목만 응시하고 면허 발급 시 면제 관련 증빙서류는 본인의 책임 하에 제출 할 것을 확인함) | |
| 6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 16조제4항에 따라 해당 승선실습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면접시험에 응시하고자 함.
(면접시험에 응시하고 면허 발급 시 면제 관련 증빙서류는 본인의 책임 하에 제출 할 것을 확인함) | |
| 7 |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2 제5호의 비교 및 제6호의 비교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고 일부 과목 필기시험만 응시하고자 함.
(필기시험 일부 과목만 응시하고 면허 발급 시 면제 관련 증빙서류는 본인의 책임 하에 제출 할 것을 확인함) | |
| 8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 13조제3항에 따라 필기시험에서 발생한 과목합격으로 해당과목을 면제받고 나머지 과목의 필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함. | |
| 9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 13조제3항에 따라 필기시험에서 발생한 과목합격이 있으나 해당과목 합격사실을 포기하고 전과목 필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함.
(이 경우 이전에 발생한 과목합격은 효력이 상실됨을 확인함) | |
| 10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 1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 일부를 면제받고 일부 과목 필기시험만 응시하고자 함.
[-면제과목: 항해, 운용, 법규, 영어 -응시과목: 전문(상선 또는 어선)] | |

| 응시자유사항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입실하여야 합니다. 2. 응시자는 응시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학생증·선원수첩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니고 있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필기시험 답안카드(O.M.R카드)는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하며, 컴퓨터(CBT) 시험 응시자는 모니터를 통해 시험문제를 풀고 마우스로 답안을 체크하므로 최소한의 컴퓨터 사용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4. 응시자는 시험시작 전에 "답안카드 작성요령"을 확인한 후 답안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5. 시험 시 부정행위를 하거나 응시원서에 적은 사항이 거짓으로 판명된 때에는 「선박직원법」 제5조의3 및 제9조에 따라 해당 시험의 정지 또는 합격결정 취소, 면허 취소 또는 처분일로 부터 2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 5. 16.>

| | | | |
|--|--|-------|-------|
| 제 호 | | | |
| 해기사시험 합격증명서 | | | |
| 성 명 | | 생년월일 | |
| 응시직종별등급 | | 합격년월일 | . . . |
| 응시면허 | [] 상선 [] 어선 | | |
| 시험결과 | 필기시험([] 면제 [] 합격)
면접시험([] 면제 [] 합격) | | |
| 필기시험
실시기관명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년도 회 해기사시험) | | |
| 용 도 | [] 면접시험용 [] 면허신청용 [] 기타 | | |
| <p>「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기사시험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직인</p> | | | |

-----자-----르-----는-----선-----

| |
|--|
| 유의사항 |
| <p>해기사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선박직원법」 제5조에 따른 면허요건을 갖추어 면허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p> |

210mm × 297mm (백상지 120g/㎡)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5. 16.>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 쪽)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재발급은 1일) |
|------|-----|------|-------------|

| | | |
|-----|--------|----------|
| 신청인 | 성명(한글) | (영문) |
| | 생년월일 | 여권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
|---------------|---------------------------------------|-----------|------------------------------|
| 선원수첩번호 | □□□□□-□□□□□ | 국적 | □ () |
| 최종학력 | 1.대졸 이상 2.전문대졸 3.고졸
4.중졸 5.기타 | 해기사
시험 | 직종별 등급 |
| 지정교육기관
출신별 | □□ 학교(원) 과(과정)
([]졸업 []재학 []수료) | | 구 분 ()년도()회
[]정기 []임시 |

| | | |
|------|------|--|
| 소지면허 | 번호 | □□-□□-□□-□□□□ () |
| | 한정선박 | 1. 한정 없음[] 2. 상선[] 3. 어선[] 4. 특수용도 선박[]
5. 수상레저면허(요트[], 요트를 제외한 동력수상레저기구[]) 6. 수상레저면허(총톤수 55톤 미만의 모터보트[], 동력요트[]) 7. 항해선이 아닌 상선[] 8. 항해선이 아닌 어선[] 9. 수면비행선박면허(표면효과전용선[], 비사업용조종사[]) |
| | 한정수역 | 1. 한정 없음 2. 국내항 3. 기타 |

| | | | | |
|------|------|--|------|-------|
| 신청면허 | 시험기관 | * □ () | 합격일 | 년 월 일 |
| | 종 류 | □□ () | 응시번호 | |
| | 한정선박 | 1. 한정 없음[] 2. 상선[] 3. 어선[] 4. 특수용도 선박[]
5. 수상레저면허(요트[], 요트를 제외한 동력수상레저기구[]) 6. 수상레저면허(총톤수 55톤 미만의 모터보트[], 동력요트[]) 7. 항해선이 아닌 상선[] 8. 항해선이 아닌 어선[] 9. 수면비행선박면허(표면효과전용선[], 비사업용조종사[]) | | |
| | 한정수역 | 1. 한정 없음 2. 국내항 3. 기타 | | |

| | | | | |
|-------|-----|--------|-----|-------|
| ※발급면허 | 종 류 | □□ () | 발급일 | 년 월 일 |
| | 번호 | | | |

| | |
|------|-------------------------|
| 발급사유 | 1. 신규 2. 갱신 3. 멸실 4. 훼손 |
|------|-------------------------|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6조)에 따라 해기사면허증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 | | |
|-------------------|--|-----------|
| 신청인
제출서류 | <p>< 발급신청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원법」 제87조에 따른 건강진단서 1부. 다만,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가. 선박에 근무 중인 사람: 선박소유자가 발급한 신청인이 승무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선원법 시행규칙」 제53조 건강진단을 받고 그 유효기간 내에 있는 사람: 선원수첩
다.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및 색각검사 결과 「선박직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합니다) 제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면허취득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면허취득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보수교육 중 레이다시뮬레이션교육, 리더십 및 팀워크교육, 전자해도장치교육, 자동충돌예방교육,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기초안전교육 및 상급안전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영 별표 1의3 제3호에 따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통신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영 제9조에 따라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이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의 것)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가. 해당 승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해당 교육과정의 이수증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사람
가. 해당 승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가목의 승무경력 증명서류와 관련된 어선원부등본(어선의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수산업협동조합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로서 그 선박소유자 및 선박제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승무원 선박이 감척(減積)되거나 폐선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응시하려는 면허와 같은 직종, 같은 등급의 면허를 소지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해당 승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해당 승선실습 프로그램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영 별표 2 제5호 비고 및 제6호 비고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선원수첩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으로 교육이수 상황 또는 승무경력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합니다.</p> <p>< 재발급신청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면허증(면허증이 찢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위를 기재한 서류 1통(면허증을 잃어버려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의 것) | 수수료
없음 |
|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 <o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인등록표등(초)본 또는 병적증명서(승무경력 증명기간 안에 군에 복무한 사실이 있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선박원부(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이 상선의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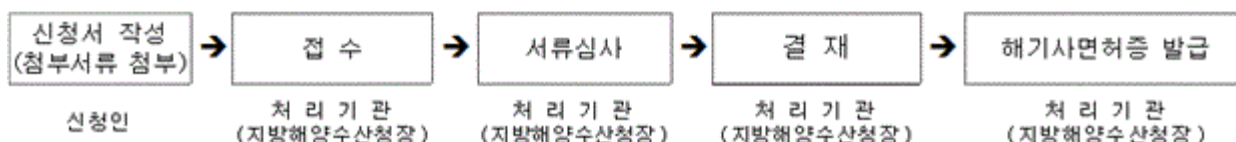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 외국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란의 ()에 여권번호를 기재하고, 성명란에는 영문으로 기재하십시오.
- 재발급신청의 경우에는 소지면허, 신청면허, 발급면허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소지자가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한정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성명, 주소, 소지면허(번호, 한정선박), 신청면허(한정선박), 발급사유란만 기재하십시오.
- “※” 표시한 곳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처리절차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1.8.>

해기사면허증 발급대장

()지방해양수산청

| 용지
번호 | 발급
일자 | 인적사항 | | | | 면허사항 | | | | | | 수령자
확인 | 담당자
확인 | 비고 |
|----------|----------|------|------|-----|------|------------|-----------|----------|----------|-------------|-----------------------------------|-----------|-----------|----|
| | | 한글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시험실시
기관 | 시험
합격일 | 면허
번호 | 면허
한정 | 유효기간
만료일 | 발급사유
(1.신규,
2.재발급,
3.갱신) | | | |
| | | 영문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4mm×257mm (백상지 30g/m²))

해기사면허증

CERTIFICATE OF COMPETENCY

이 면허증의 유효기간을 (The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is hereby extended until)
까지 연장함

(관인: Official seal)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서명(Signature of duly authorized official)

갱신일(Date of revalidation).....
 (DIRECTOR GENERAL OF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이 면허증의 유효기간을 (The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is hereby extended until)
까지 연장함

(관인: Official seal)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서명(Signature of duly authorized official)

갱신일(Date of revalidation).....
 (DIRECTOR GENERAL OF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제 2 쪽)

(관인: Official Seal)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
한 가로 3.5cm, 세로
4.5cm의 것

| | |
|--|---|
| 면허의 종류 | |
| 생년월일
(Date of birth of the holder of
the certificate) | ____월(Month) ____일(Day) ____년
(Year) |
| 면허증 소지자의 서명
(Signature of the holder of the
certificate) | |

대한민국(THE REPUBLIC OF KOREA)

1978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과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해기사면허증(CERTIFICATE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AS AMENDED)

대한민국 정부는 _____가 위 개정협약 제 _____조의 규정에 따라 해기사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과 _____까지 또는 이 면허증의 유효기간에 대한 갱신기간의 만료일까지, 아래에 표시된 면허의 한정을 조건으로 명시된 등급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해기능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합니다(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ertifies that _____ has been found duly qualifi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regulation _____ of the above Convention, as amended, and has been found competent to perform the following function, at the levels specified, subject to any limitations indicated until _____ or until the date of expiry of any extension of the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as may be shown overleaf).

| 기능(FUNCTION) | 등급(LEVEL) | 적용제한<LIMITATIONS
APPLYING (IF ANY)> |
|--------------|-----------|--|
| | | |
| | | |
| | | |
| | | |

(제 3쪽)

이 면허증의 소지자는 승무기준에 명시된 다음의 직무로 승무할 수 있습니다(The lawful holder of this certificate may serve in the following capacity or capacities specified in the applicable safe manning requirements of the Administration).

| 직무(CAPACITY) | 적용제한<LIMITATIONS APPLYING (IF ANY)> | | |
|--|-------------------------------------|--|-----------------------------------|
| | | | |
| 교육과정 이수 여부(COURSE COMPLETION STATUS) | | | |
| 레이더시뮬레이션교육
(Radar Simulation Training Course) | 예(Yes)□, 아니오(No)□,
해당 없음(N/A)□ |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
(Leadership and Teamwork Training Course) | 예(Yes)□, 아니오(No)□,
해당 없음(N/A)□ |
| 전자해도장치교육
(ECDIS Training Course) | 예(Yes)□, 아니오(No)□,
해당 없음(N/A)□ |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
(Leadership and Managerial Skill Training Course) | 예(Yes)□, 아니오(No)□,
해당 없음(N/A)□ |
| 자동충돌예방교육
(ARPA Simulation Training Course) | 예(Yes)□, 아니오(No)□,
해당 없음(N/A)□ | | |

면허증 번호(Certificate No.) 발급일(issued on)

(관인: Official Seal)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서명(Signature of duly authorized official)

(DIRECTOR GENERAL OF _____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협약 부속서 1/2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승선 중에는 이 면허증 원본을 선내에 비치하여야 합니다(The original of this certificate must be kept available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2 paragraph 11 of the Annex of the Convention while serving on a ship).

_____ 지방해양수산청장 (서명 또는 인)

(DIRECTOR GENERAL OF _____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유의사항(NOTE)

1. 해기사는 법규를 준수하고 선박항행의 안전과 해양환경의 보전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Certificated officers must observe rules and make effort to ensure the safe operation of ships and the preservation of marine environment.)
2. 이 면허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그 유효기간(2쪽의 유효기간 참조)이 만료되기 전에 「선박직원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면허증의 갱신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갱신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12개월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This certificate is valid for a period of 5 years and it is required to apply revalidation of endorsement with being met the requirements of the paragraph 2 of Article 7 of Ship Officer's Act prior to its expiry. The application for revalidation is allowed within 12 months prior to the date of expiry of this endorsement.)
3. 이 면허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This certificate must not be given or lent to other person.)
4.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면허증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In case that a notice of suspension or cancellation of the endorsement was given he or she shall submit his/her certificate to the Director General of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within 30 days from that date of receiving the notice.)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1.8.>

해기사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정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일 |
| 신청인 | 성명 | 국적 | ※ () |
| | 생년월일 | 여권번호 | |
| | 주소 (전화번호:) | | |

| | |
|--------|-------------|
| 선원수첩번호 | □□□□□-□□□□□ |
|--------|-------------|

| 변경(정정)항목 | 변경(정정)내용 | | ※ 코드 |
|----------|----------|------|------|
| | 을(를) | (으)로 | |
| 인적 사항 | 생년월일 | | |
| | 성명 | | |
| 면허 사항 | 종류 | | |
| | 번호 | | |
| | 발급기관 | | |
| | 발급일 | | |
| | 면허일 | | |

| | | |
|------|--|--|
| 기타사항 | | |
|------|--|--|

「선박직원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해기사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정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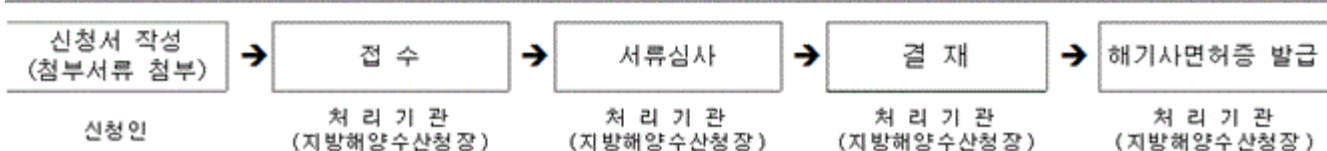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면허증
2. 변경(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수수료
없음 |
|------|---|-----------|

유의사항

1. 외국인의 경우에는 성명란을 영문으로 기재하시고, 내국인은 여권번호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2. “※” 표시한 곳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처리절차



210mm × 297mm(백상지 80g/㎡)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 5. 16.>

해기사면허증 갱신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
| 신청인 | 성명(한글) | (영문) | |
| | 생년월일 | 여권번호 | |
| | 주소 | (전화번호:) | |
| 선원수첩번호 | □□□□□-□□□□□ | 국적 | ※ () |
| 소지면허 | 번호 | □□-□□-□□-□□□□ | |
| | 종류 | ※ () | |
| | 한정선박 | 1. 한정 없음[] 2. 상선[] 3. 어선[] 4. 특수용도 선박[]
5. 수상레저면허(요트[], 요트를 제외한 동력수상레저기구[]))
6. 수상레저면허(총톤수 55톤 미만 모터보트[], 동력요트[]))
7. 항해선이 아닌 상선[] 8. 항해선이 아닌 어선[]
9. 수면비행선박면허(표면효과전용선[], 비사업용조종사[])) | |
| | 한정수역 | 1. 한정없음[] 2. 국내항[] 3. 기타[] | |
| ※ 갱신면허 | 번호 | □□-□□-□□-□□□□ | |
| | 발급일 | 년 월 일 | |
| 갱신요건 |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기간 | ()년 ()월 | |
| | 갱신교육일시 | 년 월 일 |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해기사면허증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1. 면허증(선박에 승무 중인 자는 승무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선박직원법」 제7조제3항제1호, 제1호의2 또는 제2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만,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선원수첩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으로 교육이수 상황 또는 승무경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3.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3호에 따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통신사면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4. 「선원법」 제87조에 따른 건강진단서 1부. 다만,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가. 선박에 승무 중인 사람: 선박소유자가 발급한 신청인이 승무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선원법 시행규칙」 제53조 건강진단을 받고 그 유효기간 내에 있는 사람: 선원수첩
다.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및 색각검사 결과
5.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의 것) | 수수료 없음 |
|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외국인의 경우에는 성명란을 영문으로 적으시고, 내국인은 여권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2. "※" 표시한 곳은 적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첨부) | → | 접수 | → | 서류심사 | → | 결재 | → | 해기사면허증 발급 |
| 신청인 | | 처리기관
(지방해양수산청장) | | 처리기관
(지방해양수산청장) | | 처리기관
(지방해양수산청장) | | 처리기관
(지방해양수산청장) |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5.1.8.>

| | | | |
|--|------------------------------|-------|--|
| 제 호 | | | |
| 해기사 행정처분 결과통지서 | | | |
| 성명 |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 면허명 | | 면허증번호 | |
| 처분내용 | [] 면허취소 [] 업무정지(월) [] 견책 | | |
| 처분사유 | | | |
| <p>「선박직원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p> | | | |
| <p>※ 알림</p> <p>1.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처분의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허증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p> <p>2. 업무의 정지기간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면허증을 제출받은 날부터 기산됩니다.</p>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2호의2서식] <개정 2015.1.8.>

승무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재발급은 1일)

| | |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국적 | 여권번호 |
| 근로계약사항 | 선사명
(연락처) | 선박명 |
| | 근로계약기간 | |
| 선원수첩번호 | | |
| 소지면허 | 면허번호 | |
| | 직무 | |
| | 적용제한 | |
| | 유효기간 | |
| 승무자격증
신청사항 | 승무직종 | |
| | 승무등급 | |
| ※승무자격증
교부 | 승무직종 | |
| | 승무등급 | |
| | 유효기간 | |
| | 교부번호 | |
| | 교부일자 | |
| 교부사유 | () 1. 신규 2. 갱신 3. 멸실 4. 훼손 |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증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m²)

| | | |
|-------------|--|-----------|
| 신청인
제출서류 | <p><발급 신청 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기사면허증 사본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대한민국 선사와 계약한 근로계약서 사본 1부 4.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해기사면접시험 합격증 사본 1부 또는 동 규칙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해사법규 교육이수증 사본 1부 5.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이수증 사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기초 및 상급안전교육 나. 레이더시뮬레이션 교육(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다. 레이더 ARPA교육(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라. 전자해도장치 교육 마. 선교자원관리 교육 바. 기관실자원관리 교육 사. 승선했 선박의 선박직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무교육(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6.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것) | 수수료
없음 |
| | <p><재발급 신청 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승무자격증(승무자격증이 잃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승무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위를 기재한 서류 1부(승무자격증을 잃어버려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것)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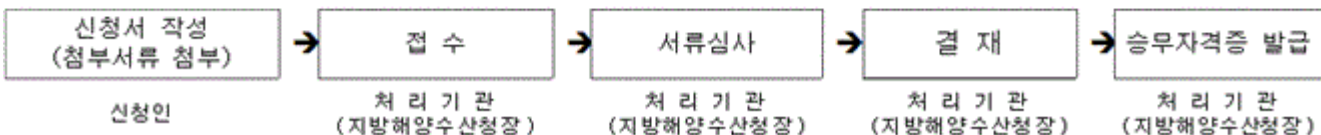
작성 방법

1. 영문기재 항목: 성명, 국적, 직무, 적용제한, 승무직종, 승무등급
2. “※” 표시한 곳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안내사항

신청 시 최소 처리기간은 외국인해기사 국가의 해기사면허 증명문서의 회신일부터 3일입니다.

처리절차



[별지 제12호의3서식] <개정 2015.1.8.>

승무자격증 발급대장

()지방해양수산청

| 일련
번호 | 용지
번호 | 발급
일자 | 발급
사유 | 인적사항 | | | | 승무자격증사항 | | | | 수령자
확인 | 담당자
확인 | 비고 |
|----------|----------|----------|----------|------|------|------------------------|----|-------------|------|------|------|-----------|-----------|----|
| | | | | 성명 | 여권번호 | 소속회사(주소)
(연락처, 담당자) | 국적 | 승무자격증
번호 | 승무직종 | 승무등급 | 유효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4mm×257mm (백상지 30g/㎡))

[별지 제12호의4서식] <개정 2016. 5. 16.>

(1쪽)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의 것
Photograph of
3.5cm×4.5cm taken
within 6 months

승무자격증 CERTIFICATE OF ENDORSEMENT

이 승무자격증의 유효기간을(The validity of this endorsement is hereby extended
until) 까지 연장함

(관인: Official Seal)

갱신일(Date of Revalidation)

(DIRECTOR GENERAL OF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이 승무자격증의 유효기간을(The validity of this endorsement is hereby extended
until) 까지 연장함

(관인: Official Seal)

갱신일(Date of Revalidation)

(DIRECTOR GENERAL OF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210mm×297mm(백상지 80g/m²)

(2쪽)

(관인: Official Seal)

승무자격증 번호
Endorsement Number

대한민국(THE REPUBLIC OF KOREA)

1978년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과 그 개정규정에 따라 해기사면허증이 인정된 것을 증명하는 승무자격증(ENDORSEMENT ATTESTING THE RECOGNITION OF A CERTIFICATE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AS AMENDED)

대한민국정부는 정부에 의해서 또는 대신하여
에게 발급된 증서번호 의 면허가 위 개정협약의 제 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사자격을 갖추었다는 것과 까지 또는 이 승무자격증의 유효기간에 대한
갱신기간의 만료일까지, 아래에 표시된 면허의 한정을 조건으로 명시된 등급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해기능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합니다(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ertified that certificate No. issued to by or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has been found duly qualified in accordance with provisions of
regulation 1/10 of the above Convention, as amended, and the lawful holder is authorized to
perform the following function, at the levels specified, subject to any limitations indicated until
or until the date of any extension of the validity of this endorsement as
may be shown below).

| 기능(FUNCTION) | 등급(LEVEL) | 적용제한<LIMITATIONS
APPLYING(IF ANY)>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승무자격증의 소지자는 승무기준에 명시된 다음의 직무로 승무할 수 있습니다(The lawful holder of this endorsement may serve in the following capacity or capacities specified in the applicable safe manning requirements of the Administration)

| 직무(CAPACITY) | 적용제한<LIMITATIONS APPLYING(IF ANY)> |
|--------------|------------------------------------|
| | |

생년월일(Date of birth of the holder of the endorsement) _____ 월(Month)
 일(Day) _____ 년(Year)

승무자격증 소지자의 서명(Signature of the holder of the endorsement)
 승무자격증 번호(Endorsement No.) _____ 발급일(Issued on) _____
 (관인: Official Seal)

(DIRECTOR GENERAL OF _____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협약 1 / 제2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 중에는 이 승무자격증 원본을 선내에 비치하
 여야 합니다(The original of this endorsement must be kept available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 / 2 paragraph 11 of the Convention while serving on a ship)

지방해양수산청장 (서명 또는 인)
 (DIRECTOR GENERAL OF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 직무(CAPACITY) | 적용제한<LIMITATIONS APPLYING(IF ANY)> |
|--------------|------------------------------------|
| | |

지방해양수산청장 (서명 또는 인)
(DIRECTOR GENERAL OF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주의사항(Remarks)

1. 해기사는 법규를 준수하고 선박항행의 안전과 해양환경의 보전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Certificated officers must observe rules and make effort to ensure the safe operation of ships and the preservation of marine environment).
2. 이 승무자격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그 유효기간(2쪽의 유효기간 참조) 이 만료되기 전에 「선박직원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승무자격증의 갱신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갱신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12개월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This endorsement is valid for a period of 5years and it is required to apply revalidation of endorsement with being met the requirements of the paragraph 2 of Article 7 of Ship Officer's Act prior to its expiry. The application for revalidation is allowed within 12 months prior to the date of expiry of this endorsement).
3. 이 승무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This endorsement must not be given or lent to other person).
4. 승무자격증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승무자격증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In case that a notice of suspension or cancellation of the endorsement was given he or she shall submit his/her endorsement to the Director General of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within 30 days from that date of receiving the notice).

(1쪽)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의 것
Photograph of
3.5cm×4.5cm taken
within 6 months

승무자격증

CERTIFICATE OF ENDORSEMENT

이 승무자격증의 유효기간을(The validity of this endorsement is hereby extended until) 까지 연장함

(관인: Official Seal)

갱신일(Date of Revalidation)

(DIRECTOR GENERAL OF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이 승무자격증의 유효기간을(The validity of this endorsement is hereby extended
until) 까지 연장함

(관인: Official Seal)

갱신일(Date of Revalidation)

(DIRECTOR GENERAL OF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2쪽)

(관인: Official Seal)

승무자격증 번호
Endorsement Number

대한민국(THE REPUBLIC OF KOREA)

1995년 「어선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과 그 개정규정에 따라 해기사면허증이 인정된 것을 증명하는 승무자격증(ENDORSEMENT ATTESTING THE RECOGNITION OF A CERTIFICATE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FISHING VESSEL PERSONNEL, 1995, AS AMENDED)

대한민국정부는 정부에 의해서 또는 대신하여 에게
발급된 증서번호 의 면허가 위 개정협약의 제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사자격을 갖추었다는 것과 까지 또는 이 승무자격증의 유효기간에 대한 갱신기간의 만료일까지, 아래에 표시된 면허의 한정을 조건으로 명시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해기능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합니다(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ertified that certificate No. issued to by or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has been found duly qualifi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regulation 1/7 of the above Convention, as amended, and the lawful holder is authorized to serve as specified below, subject to any limitations indicated until or until the date of expiry of any extension of the validity of this endorsement as may be shown above).

이 승무자격증의 소지자는 승무기준에 명시된 다음의 직무로 승무할 수 있습니다(The lawful holder of this endorsement may serve in the following capacity or capacities specified in the applicable safe manning requirements of the Administration).

| 직무(CAPACITY) | 적용제한<LIMITATIONS APPLYING(IF ANY)> |
|--------------|------------------------------------|
| | |

(3쪽)

생년월일(Date of birth of the holder of the endorsement)

월(Month)

일(Day)

년(Year)

승무자격증 소지사의 서명(Signature of the holder of the endorsement)

승무자격증 번호(Endorsement No.)

발급일(Issued on)

(관인: Official Seal)

(DIRECTOR GENERAL OF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지방해양수산청장 (서명 또는 인)

(DIRECTOR GENERAL OF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주의사항(Remarks)

1. 해기사는 법규를 준수하고 선박항행의 안전과 해양환경의 보전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Certificated officers must observe rules and make effort to ensure the safe operation of ships and the preservation of marine environment).
2. 이 승무자격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그 유효기간(2쪽의 유효기간 참조)이 만료되기 전에 「선박직원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승무자격증의 갱신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갱신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12개월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This endorsement is valid for a period of 5 years and it is required to apply revalidation of endorsement with being met the requirements of the paragraph 2 of Article 7 of Ship Officer's Act prior to its expiry. The application for revalidation is allowed within 12 months prior to the date of expiry of this endorsement).
3. 이 승무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This endorsement must not be given or lent to other person).
4. 승무자격증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승무자격증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In case that a notice of suspension or cancellation of the endorsement was given he or she shall submit his/her endorsement to the Director General of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within 30 days from that date of receiving the notice).

[별지 제12호의6서식] <개정 2026. 4. 9.>

승무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정정) 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1일 | |
| 신청인 | 성명(한글) | | (영문) | | |
| | 생년월일 | | 여권번호 | | |
| | 소속회사명 주소 | | (전화번호:) | | |
| 선원수첩번호 | | | | | |
| 변경(정정)항목 | | 변경(정정)내용 | | ※ 코드 | |
| | | 을(를) | (으)로 | | |
| 승무
자격증
사항 | 승무직종 | | | | |
| | 승무등급 | | | | |
| | 유효기간 | | | | |
| | 기타 | | | | |
| 기타사항 | | | | |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증 기재사항의 변경(정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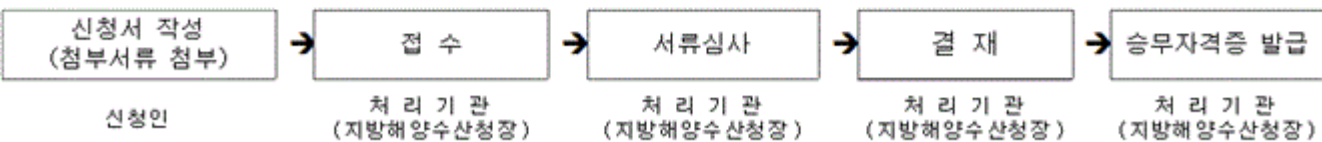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승무자격증
2. 변경(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작성방법

1. 성명란에는 영문으로 기재하십시오.
2. “※” 표시한 곳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2호의7서식] <개정 2026. 4. 9.>

승무자격증 갱신 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 | |
|-------------------|--------|------|----------|
| 신청인 | 성명 | | (전화번호:) |
| | 생년월일 | 여권번호 | |
| | 선원수첩번호 | | |
| 소지면허 | 면허번호 | | |
| | 직무 | | |
| | 적용제한 | | |
| | 유효기간 | | |
| 승무
자격증 | 승무직종 | | |
| | 승무등급 | | |
| | 유효기간 | | |
| | 발급번호 | | |
| | 발급일자 | | |
| ※ 승무
자격증
갱신 | 유효기간 | | |
| | 발급번호 | | |
| | 발급일자 | | |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기간: ()년 ()월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라 승무자격증의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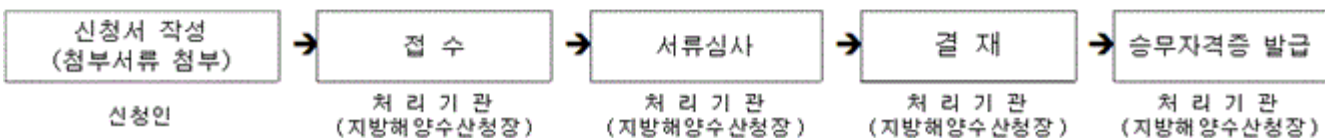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해기사면허증 사본 1부
2. 건강진단서 1부(선박에 승무 중인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신청인이 승무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승무자격증(선박에 승무 중인 사람은 승무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1부
4. 한국 선박의 승선경력증명서 1부(갱신하고자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1년 이상 승선한 증명서)
5.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것) | 수수료
없음 |
|------|---|-----------|

작성 방법

- 영문기재 항목: 성명, 국적, 직무, 적용제한, 승무직종, 승무등급
- “※” 표시한 곳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12호의8서식] <개정 2026. 4. 9.>

| | | | |
|--|------|------|---|
| <p style="text-align: center;">년도([] 정기 [] 임시)시험
외국인해기사 면접시험 응시원서</p> | | | <p style="text-align: center;">사진
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의 것</p> |
| 성명 | | 생년월일 | |
| 국적 | | 여권번호 | |
| 선원수첩번호 | | | |
| 소지면허 | 면허번호 | | |
| | 직무 | | |
| | 적용제한 | | |
| | 유효기간 | | |
| <p>「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라 승무자격증 취득을 위한 외국인 해기사 면접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응시자 성명: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연락처:</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margin-top: 2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20px;"> <p style="text-align: center;">응시번호</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30px; width: 100%;"></div> </div>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귀하</p> </div> <p>첨부서류: 해기사면허증 사본 1부</p> | | | |

210mm × 297mm (백상지 80g/㎡)

[별지 제12호의9서식] <개정 2026. 4. 9.>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0일 |
| 교육기관명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교육기관의 장 | | | |
| 교육과정 | 과정명 | 정원 | 기간 |
| | | | |
| | | | |
| | | |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6에 따라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을 받고자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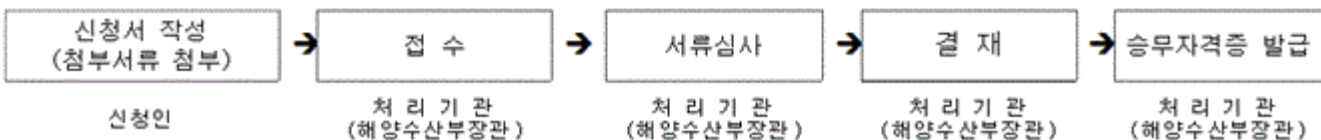
교육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
|-----------------|---|-----------|
|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 1. 지정신청의 경우
가. 해당 교육기관의 연혁·조직 및 운영계획
나. 교육시설 현황
다. 교직원 인적사항·자격, 교직원별 담당과목 및 담당시간
라.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마. 해당 교육기관의 예산내역
바.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지정신청의 경우
가.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지정서
나. 변경사유를 적은 서류 | 수수로
없음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2호의10서식] <개정 2026. 4. 9.>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서

| | | | |
|---|-----|----|----|
| 교육기관명 | | | |
| 주소 | | | |
| 교육기관의 장 | | | |
| 교육과정 | 과정명 | 정원 | 기간 |
| | | | |
| | | | |
| | | | |
| 지정조건 | | | |
| <p>「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6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40px;">년 월 일</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align-items: center; margin-top: 4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p style="font-size: 1.2em; margin: 0;">해양수산부장관</p> </div> <div style="margin: 0 10px;"> <div style="border: 2px solid orange; width: 60px; height: 6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직인 </div> </div> </div> | | | |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12호의1서식] <개정 2026. 4. 9.>

No.

교육이수증 (CERTIFICATE)

사진

(3.5cm×4.5cm)

성명(Name):

생년월일(Date of Birth):

여권번호(Passport No.):

해기사면허증 번호(Certificate No.):

다음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함

Every training course described hereafter has been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Regulations of '78 STCW Convention as amended.

| 이수과정
(COURSE) | 교육기간
(PERIOD) | 유효기간
(VALIDITY) |
|------------------|------------------|--------------------|
| | | |
| | | |
| | | |
| | | |

지정교육기관의 장

PRESIDENT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5.1.8.>

선박직원 승무기준 완화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 | | |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2일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명칭 | | | | |
| | 성명(대표자) | | | 생년월일 | |
| | 주소
(전화번호:) | | | | |
| 선명 | 선박의 크기
(총톤수 · 주기관추진력) | | 항행구역 | 무선설비종류 | |
| | :G/T
:KW | | | | |
| 외국선박 | 국적: | | 선박소유자: | | |
| 완화신청내용 | 해당직종의 직무별 법정자격(을) | | 허가받고자 하는 직무별자격(으로) | | |
| | | | | | |
| 신청사유 | | | | | |

「선박직원법」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박직원의 승무기준 완화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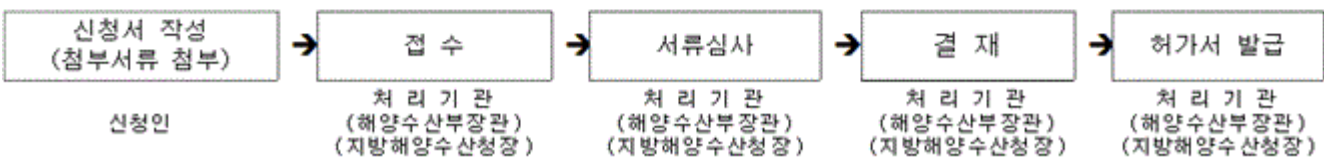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 없음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5.1.8.>

선박직원 승무기준 완화허가서

| | | | |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명칭 | | | |
|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
| | 주소 | | | |
| 선명 | | 선박의 크기
(총톤수·주기관추진력) | 항행구역 | 무선설비종류 |
| | | :G/T
:KW | | |
| 외국선박 | 국적: | 선박소유자: | | |
| 완화허가
내용 | 해당직종의 직무별 법정자격(을) | | 직무별 완화자격(으로) | |
| | | | | |
| 허가조건 | | | | |
| <p>「선박직원법」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p> <div style="border: 2px solid orange; width: 100px; height: 8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margin: 10px auto;"> 직인 </div>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선박교통관련법규

1. 해사안전기본법
2.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3.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4.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5.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8.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 도선법
11. 도선법 시행령
12. 도선법 시행규칙



해사안전기본법

[시행 2024. 1. 26.] [법률 제19572호, 2023. 7. 25., 전부개정]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51 - 773 - 5820, 58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사안전 정책과 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방지 및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해양에서 선박의 항행 및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장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임을 확인하고, 해양의 이용이나 보존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해사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사안전관리”란 선원·선박소유자 등 인적 요인, 선박·화물 등 물적 요인, 해상교통체계·교통시설 등 환경적 요인, 국제협약·안전제도 등 제도적 요인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선박의 운용과 관련된 모든 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선박”이란 물에서 항행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배로 수상항공기(물 위에서 이동할 수 있는 항공기를 말한다)와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 가까이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3. “해양시설”이란 자원의 탐사·개발, 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계류(繫留)·수리·하역, 해상주거·관광·레저 등의 목적으로 해저(海底)에 고착된 교량·터널·케이블·인공섬·시설물이거나 해상부유 구조물(선박은 제외한다)인 것을 말한다.
4. “해사안전산업”이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해양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장비·시설·제품 등을 개발·생산·유통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5. “해상교통망”이란 선박의 운항상 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운항흐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영해 및 내수에 설정하는 각종 항로, 각종 수역 등의 해양공간과 이에 설치되는 해양교통시설의 결합체를 말한다.
6. “해사 사이버안전”이란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선박운항시스템을 보호함으로써 선박운항시스템과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 등 안전성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사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에서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해상교통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양시설의 관리, 해상교통망의 구축 및 관리, 해상교통 관련 신기술의 개발·기반조성 지원,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사안전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한 해양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에 대한 해사안전 지식·정보의 제공, 해사안전 교육 및 해사안전 문화의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국가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해사안전에 관한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 조사·연구를 위한 기구설치 등 효율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해사안전 관련 산업의 진흥 및 국제화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5조(국민 등의 책무)** ① 모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해사안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② 선박·해양시설 소유자는 국가의 해사안전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 자기가 소유·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선박·해양시설로부터 해양사고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제반 안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7조(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증진을 위한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중 항행환경 개선에 관한 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 해사안전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장 또는 개인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해사안전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해사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별 해사안전시행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할 내용과 수립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해사안전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제3장 해상교통관리시책 등

제11조(해상교통관리시책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교통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한 통항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상교통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상교통관리시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연안해역 등에 대한 교통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종 해상교통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상교통관리시책의 수립·추진 및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2조(선박 및 해양시설의 안전성 확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설비 및 시설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교통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선박의 안전성 및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3조(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해사안전관리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2. 해사안전관리 업무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3. 해사안전관리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보급

4. 신기술 접목 선박 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해사안전관리와 관련한 대학·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와 제3항에 따른 지원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사고 원인정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교통안전정보(이하 “해양교통안전정보”라 한다)를 통합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이하 이 조에서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통안전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공공기관의 장, 해사안전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장 또는 개인에게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와 해양교통안전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및 해양교통안전정보의 공유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선박의 해양사고 발생 건수, 관계 법령이나 국제협약에서 정한 선박의 안전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및 그 선박의 소유자·운항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자 등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대하여는 사고개요, 해당 선박의 명세 및 소유자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1. 「해운법」 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2.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3. 대한민국의 항만에 기항(寄港)하는 외국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4. 그 밖에 국제해사기구 등 해사안전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선박의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선박
-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안전투자의 공시) ① 「해운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사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선박시설 유지보수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해사안전과 관련한 지출 또는 투자(이하 “안전투자”라 한다)의 세부내역을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의 범위 및 항목과 공시 기준, 절차 등 안전투자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5. 7. 26.] 제16조

제4장 국제협력 및 해사안전산업의 진흥

제17조(국제협력의 증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각종 해사안전 동향 조사 및 정책 개발, 인력·기술의 교류 등에 관하여 국제해사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 외국정부 및 기관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해사기구가 추진하는 해사안전에 관한 새로운 규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융복합 연구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8조(해사안전산업의 진흥시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해사안전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새롭게 등장하는 해사안전 분야의 신산업 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조사, 기술개발, 기반시설 구축 등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금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해사안전산업 관련 실증시설 설치 및 시범지구 조성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사안전에 필요한 신기술이 반영된 선박,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실증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각종 해사안전산업 분야의 실증사업을 위하여 실증시설 설치 및 시범지구 조성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 이행 기본계획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7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점검계획(이하 “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이행계획 및 점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이행계획 및 점검계획의 세부 내용 및 수립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해양안전교육 및 문화 진흥

제21조(해양안전교육·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고 해양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해양안전교육 및 해양안전체험활동 사업
2.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사업
3. 해양안전행동요령 등 해양안전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사업
4. 해양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사업
5. 그 밖에 해양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22조(해양안전교육의 활성화)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이 해양안전에 관한 지식을 갖추어 해양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양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안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2. 체험형 해양안전교육사업의 실시
3. 해양안전교육 전문강사에 대한 교육·훈련
4. 해양안전교육에 대한 인식 및 수요조사

5. 그 밖에 해양안전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23조(해양안전현장)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고취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안전에 관한 사항과 해사안전관리 등 해양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한 해양안전현장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② 해양안전과 관련된 행정기관 등은 제1항에 따른 해양안전현장을 관계 시설이나 선박 등에 게시하는 등 해양안전현장의 내용을 관계자에게 널리 알리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해양안전의 날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해양안전의 날을 정하고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제25조(포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안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26조(조사 및 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사안전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검사를 하는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7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8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사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비밀유지) 제28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사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31조(벌칙) 제29조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과태료)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시행일: 2025. 7. 26.] 제33조제1항

부칙 <제19572호, 2023. 7.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및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사안전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및 해사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범사업의 특례)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16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사안전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사안전법」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3에 따라 수립된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해사안전시행계획 및 국제해사기구의 회원국 감사 대응계획은 이 법 제7조, 제8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계획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4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72. 「해사안전기본법」

②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 「해사안전법」 ”을 “ 「해사안전기본법」 ”으로 한다.

③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 「해사안전법」 제6조제1항 ”을 “ 「해사안전기본법」 제7조제1항 ”으로 한다.

④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중 “ 「해사안전법」 제2조 ”를 “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2호 ”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사안전법」 또는 그 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해사안전법」 또는 그 법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1. 26.] [대통령령 제34152호, 2024. 1. 16., 전부개정]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51 - 773 - 5820, 5821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사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① 「해사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사안전정책의 중장기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해사안전정책 환경의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선박·해양시설 및 여객·승무원 등의 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
 4. 수역의 설정, 해상교통환경 조사 및 사고 위해요소 개선에 관한 사항
 5. 선박의 항행 관련 항행보조시설·장비·정보통신체제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해사안전 관련 인력의 양성·수급에 관한 사항
 7. 해사안전 지식의 보급 및 문화의 증진에 관한 사항
 8. 해사안전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9. 해사안전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0. 해사안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1. 해사안전 관련 제도·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
 12. 해사안전 관련 투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13. 부문별·기관별·연차별 사업계획의 추진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해사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사안전정책의 중장기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해사안전 관련 제도·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해사안전 관련 투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제3조(해사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사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시행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별 작성권자”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통보받으면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관별 해사안전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관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관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에 위반되거나 그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별 작성권자에게 기관별 시행계획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별 작성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수정이나 보완 사항을 반영한 기관별 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관별 시행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시행계획을 시행연도의 2월 말일까지 확정해야 한다.

⑤ 기관별 작성권자는 매년 기관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시행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5조(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대학·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이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적절할 것
2. 강의실 및 실습실 등 교육시설과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3. 해사안전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등 전문 교수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4. 교육과정 운영에 드는 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대학·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해사안전관리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해사안전관리전문인력양성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
2. 강사의 강의료 및 수당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교육 기자재 구입 비용과 교육시설의 설치·운영 비용
4.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⑤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해사안전관리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사안전관리전문인력양성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관리되는 해양교통안전정보의 정확도 검증 등을 위하여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이란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을 말한다.

1.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고
2. 선박이 충돌·좌초·전복(顛覆)·침몰 등으로 멸실되거나 감항능력(堪航能力)을 상실하여 선박에 대한 수난구호 또는 예인(曳引)작업이 이루어진 사고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출 사고
 - 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류가 30킬로리터 이상 유출된 사고
 - 나. 「해상교통안전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름(가목에 따른 유류는 제외한다)이 100킬로리터 이상 유출된 사고

제8조(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국제협약과 관련 규정(이하 “국제협약등”이라 한다)에 따른 협약 당사국으로서의 국가의 의무 및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

1.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2.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3.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4. 「국제 만재흡수선 협약」
5.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
6.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협약」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국제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국제해사기구의 규정

②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협약등에 따른 협약 당사국으로서의 국가 의무 및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국제협약등의 이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국제협약등에 따라 국가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관리 및 해당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협약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점검계획의 수립)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점검계획(이하 “점검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점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협약등의 국내법 반영현황 및 계획 등
2. 국제협약등의 이행과 관련된 인력의 자격, 선발 방법과 권한 및 관련 조직 등
3. 국제협약등의 이행과 관련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등
4. 국제협약등의 이행과 관련된 교육·훈련 등
5. 그 밖에 이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한 결과 이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보완 등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해양안전의 날 등) ①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안전의 날은 매월 1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해양안전의 날에 교육·홍보 등 필요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해사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나 개인에게 행사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업무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의 공시에 관한 업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시행일: 2025. 7. 26.] 제11조제2호

제12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대상 선박에 대하여 2024년 1월 26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34152호, 2024. 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호 및 별표 2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해사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해사안전법 시행령」의 개정
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시험과목란 제1호 중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
법」”으로 한다.

②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의 법규의 과목내용란 중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 및 「해
상교통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의 법규의 과목내용란 중 “「해사안전법」
”을 “「해사안전기본법」 및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5호의 7. 법규 및
직무일반의 과목내용란 중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
」”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의 법규의 과목내용명란 중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
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③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해사안전기본법」

7의2. 「해상교통안전법」

④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해사안전법」 제2조제4호”를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2호
”로 한다.

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라목의 출제 범위란 4) 및 같은 표 제2호라목의 출제 범위란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해사안전기본법」 및 「해상교통안전법」

⑥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4호 중 “「해사안전법」 제6조”를 “「해사안전기본법」 제7조”로 한다.

⑦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의 해사행정사란 라목 중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 「해상
교통안전법」”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사안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해사
안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
다.

부칙 <제34194호, 2024. 2. 6.> (기상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3 비고 제1호 후단 중 “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폭풍해일주의보、지진해일주의보、태풍주의보、풍랑주의보 또는 폭풍해일경보、지진해일경보、태풍경보、풍랑경보 ”를 “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3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태풍、풍랑、폭풍해일에 관한 특보, 같은 영 제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태풍、풍랑、폭풍해일에 관한 해양기상특보 및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진해일에 관한 특보 ”로 한다.

⑨ 생략

■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별표 1]

해사안전관리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제5조제5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경고를 할 때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위반 | 2차 이상
위반 |
|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3조
제4항제1호 | 지정취소 | - |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3조
제4항제2호 | 경고 | 지정취소 |
| 다.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 제13조
제4항제3호 | 경고 | 지정취소 |

■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시행일: 2025. 7. 26.] 제2호가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단위: 만원)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 법 제33조 제1항 | 150 | 200 | 300 |
| 나.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 법 제33조 | 100 | 150 | 200 |

| | | | | |
|--|------------------|-----|-----|-----|
|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제2항제1호 | | | |
| 다.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33조
제2항제2호 | 100 | 150 | 200 |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 26.] [해양수산부령 제651호, 2024. 2. 5., 전부개정]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51 - 773 - 5820, 58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사안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① 「해사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 해양시설 및 해상교통시설 등에 관한 사항
 2. 해사안전 관련 기술의 수준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해사안전 관련 법령·정책·제도에 관한 사항
 4. 해사안전산업의 국제동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사안전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서면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실시상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법 제13조제2항 및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과정·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등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2. 영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 ③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4조(해양교통안전정보) 법 제14조제1항에서 “해양사고 원인정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교통안전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해양사고 및 사고 원인에 관한 정보
2. 선박의 등록 및 운항기록에 관한 정보
3. 선박의 위치 및 입항·출항에 관한 정보
4. 선박의 점검·검사 및 인증심사에 관한 정보
5. 선박 운용 관련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6. 선원의 면허 및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
7. 선원의 승선·하선에 관한 정보
8. 선박 및 선원 공제에 관한 정보
9. 해운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
10. 항로, 수로 및 항만 등 해양 공간에 관한 정보
11. 해양시설에 관한 정보
12. 항로표지 등 항행보조시설에 관한 정보
13. 해양 기상 및 해상교통환경에 관한 정보
14. 항행안전 지원에 관한 정보
15.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에 관한 정보
1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5조(공표 대상 선박의 범위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해양사고를 발생시킨 선박
2.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항행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은 외국선박
3. 「해상교통안전법」 제5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 정부의 항만국통제에 따라 항행정지처분을 받은 선박
4. 「해상교통안전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항행정지명령을 받은 선박

②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③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④ 영 제7조제3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름”이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하는 기름을 말한다.

제6조(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선박의 명세(선박명, 총톤수, 선박번호, 국제해사기구번호)
2. 해당 선박의 해양사고 발생건수 및 사고개요
3. 해당 선박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 및 위반 실적
4. 선박소유자, 선박운항자 및 안전관리대행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

②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2. 영 제7조 각 호에 따른 해양사고의 발생 이력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민의 안전과 해사안전관리를 위해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알릴 수 있다.
1. 「선박안전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체 또는 기관
 - 가. 「선박안전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꺼측정업체
 - 나.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선급법인
 - 다. 「선박안전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 라. 「선박안전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
 2.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3.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협회
 4.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른 선주상호보험조합 또는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
 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7조(안전투자의 공시)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시의무자”라 한다)를 말한다.

1.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2.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이하 “안전투자”라 한다)의 범위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노후한 선박의 교체를 위한 신규 선박의 건조 또는 중고 선박 구입·임차
- 나. 선박 상태의 유지·관리
- 다. 선박 내부의 안전·보전 관리
- 라. 여객용 안전시설의 유지·관리(제1항제1호의 자만 해당한다)

2. 인적자원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선박안전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의 운영
- 나. 선박안전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 안전품질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해상교통안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제
- 나. 선박 및 사업장에 대한 품질경영체제(ISO 9000 표준시리즈)
- 다. 해사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

라. 그 밖에 안전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공시의무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 안전투자의 세부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안전투자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시의무자에게 보완내용 및 보완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투자 세부내역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일: 2025. 7. 26.] 제7조

제8조(포상의 기준 및 방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해양안전에 대한 기여도 및 공적의 정도를 고려해야 하며,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으로 구분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할 때에는 표창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표창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의 기준 및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안전투자 공사업무의 위탁) 영 제11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청 업무를 말한다.

[시행일: 2025. 7. 26.] 제9조

제10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7월 26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자의 범위
2. 제7조제2항에 따른 안전투자의 범위 및 항목

부칙 <제651호, 2024. 2.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가목의 세부 내용란 4) 및 같은 표 제2호가목의 세부 내용란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해사안전기본법」 및 「해상교통안전법」

②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란 중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③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 비고 제4호 중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④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제1항 중 “「해사안전법」 제57조”를 “「해사안전기본법」 제15조”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30일 |
|------|------|----------|

| | | |
|-----|---------------------|---|
| 신청인 | 명칭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설립 연월일
년 월 일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
|---------------|----|
| 전문인력
양성 분야 | 1. |
| | 2. |
| | 3. |

「해사안전기본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사안전관리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15 | 10 | 5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교육과정·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등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1부
2.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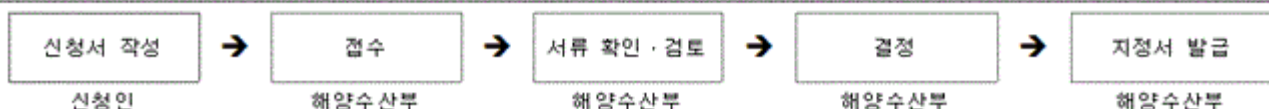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제 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1.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소재지:
4. 전문인력 양성 분야:

「해사안전기본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사안전관리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

| 접수일 | 지정번호 | 발급일 | 신청인 | | | 소재지 |
|-----|------|-----|-----|--------|------|-----|
| | | | 명칭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98호, 2024. 12. 20.,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 032 - 835 - 2986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교통관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교통의 안전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20.>

1. “선박교통관제”란 선박교통의 안전을 증진하고 해양환경과 해양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고 선박과 통신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선박의 동정을 관찰하며 선박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정보 및 항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항만운영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선박교통관제구역”이란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역 내에서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 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해(이하 “영해”라 한다)
 - 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에 따른 내수(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수·늪 등은 제외하며, 이하 “내수”라 한다)
- 2의2. “영해 밖 관제구역”이란 제3호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이 항행하는 영해와 영해 사이의 구역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3. “관제대상선박”이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부선은 제외한다) 중에서 선박교통관제 실시 대상이 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 가.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 나.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중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내항어선은 제외한다.
 - 다.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
 - 라.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선박교통의 안전 등을 위하여 관찰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선박
4. “선박교통관제사”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해양사고”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2는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4. 12. 20.]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선박교통의 안전 및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박교통관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선박소유자의 책무) ① 선박소유자는 국가의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 자가 소유·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도록 운항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제반 안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선박교통관제의 목적·용어, 통신절차 및 정보교환 방법
2. 선박교통관제의 관련 규정 및 제반 준수사항
3. 국내 선박교통관제 운영 현황
4.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운항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용·방법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국제 교류·협력의 증진)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단체 등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정보교환 및 공동 조사·연구 등 국제 교류·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선박교통관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8조(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 ①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해사안전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어야 한다.<개정 2023. 7. 25.>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교통관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선박교통관제 운영에 관한 사항
3. 선박교통관제를 위한 시설의 구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선박교통관제사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선박교통관제 관련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6. 선박교통관제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 ①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행계획에 포함할 내용과 수립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제출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선박교통관제의 시행) ①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기 위한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효율적인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위하여 선박교통관제관서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관서(이하 “선박교통관제관서”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①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관제대상선박이 따라야 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② 해양경찰청장이 제1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는 경우 선박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3조 삭제 <2024. 12. 20.>

제14조(선장의 의무 등) ①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제18조제1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를 경우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해당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유를 지체 없이 선박교통관제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12. 20.>

- ②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에도 그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지 아니한다.<개정 2024. 12. 20.>
- ③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碇泊) 또는 계류(繫留)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선박교통관제구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
- ④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 또는 정류(停留)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와 관제통신 주파수를 갖추고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응답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의 장애로 인하여 선박교통관제사와 지정된 주파수로 통화가 불가능할 때에는 휴대전화 등 다른 통신주파수를 이용하여 청취·응답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 ⑤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 중인 경우로서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의 항로상의 장애물이나 해양사고 발생 등으로 선박교통의 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제대상선박의 신고 절차 및 선박교통관제구역별 관제통신의 제원(諸元)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12. 20.>

제15조(관제통신의 원칙 및 녹음) ① 선박교통관제사와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제통신을 할 때에는 관련 정보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선박교통관제관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른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제통신의 녹음방법 및 보존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 12. 20.]

제16조(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등) ① 관제업무는 선박교통관제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선박교통관제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시행하는 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한다.
- ③ 선박교통관제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기적인 교육 및 평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교육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경찰청장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해양경찰청장은 전문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⑤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3. 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생의 교육·훈련과정 이수 처리를 한 경우
- ⑥ 해양경찰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 선박교통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7. 25., 2024. 12. 20.>

- 1.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 또는 정류하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한 관찰확인,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조언 또는 지시
- 2. 혼잡한 교통상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선박교통정보 및 기상청에서 발표한 기상특보 등의 제공
-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항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선박 출입신고·선석(船席)·정박지(碇泊地)·도선(導船)·曳船(曳船) 정보 등 항만운영정보의 제공
- 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조의2 및 제9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무역항 질서 단속에 관한 정보의 제공
- 5. 「해상교통안전법」 제36조에 따른 선박 출항통제 관련 정보의 제공
- 6. 그 밖에 선박교통안전과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8조의2(영해 밖 관제수역의 선박교통관제) ① 해양경찰청장은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선박교통관제를 할 수 있다.

- 1.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조언
 - 2. 혼잡한 교통상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선박교통정보 제공 또는 조언
 - 3. 「기상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 등의 기상정보 제공
 - 4. 그 밖에 선박교통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조언
- ②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제수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를 관제통신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영해 밖 관제수역에서 관제통신 실시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12. 20.]

제19조(관제업무 절차) 선박교통관제사가 관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업무수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교통관제사가 선박이 명백한 사고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제업무 절차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선박교통관제사의 권한) ①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해양기상상태, 항로 상태, 해상교통량 및 해양사고 등을 고려하여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박의 입항·출항 및 이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②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경비함정 출동과 도선 또는 예선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관제시설의 설치·관리) ①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위하여 레이더, 초단파 무선전화,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관제업무를 위한 시설(이하 “관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관제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관제시설의 수리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관제시설의 기술기준) ① 관제시설은 「전파법」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관제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그 성능을 개량하려는 때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과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관제시설의 기능 및 규격을 통일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기술의 개발·지원)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제시설의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 ① 선박교통관제에 대한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 해양경찰청장 등의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이하 “관제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관제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관제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1. 선박교통관제사의 관제업무 수행을 위한 연구 활동

2. 선박교통관제사 교육훈련 및 평가에 관한 연구 및 사업수행
 3. 관제시설의 발전과 기술향상에 관한 연구
 4. 해양사고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국내외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규의 제정·개정에 관한 연구
 6. 선박교통관제 분야 국내외 유관기관 간 학술교류,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선박교통관제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④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제협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관제협회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관제협회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관제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양경찰청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벌칙)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2. 20.>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 12. 20.>

1. 제14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2.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관제통신을 청취·응답하지 아니한 사람
 3. 제14조제6항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의 신고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
 4.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지 아니한 사람
- ② 제14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6700호, 2019. 1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사안전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벌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해사안전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1호를 삭제한다.

제36조 및 제3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4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7조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110조제3항제15호, 제15호의2 및 제15호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②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8조제1항제1호 중 “ 제11조, 제20조제1항, 제22조 ”를 “ 제11조 ”로 한다.

제56조제9호의2를 삭제한다.

제5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 해양수산부장관(제20조 및 제22조를 위반한 자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 ”를 “ 해양수산부장관 ”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사안전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해사안전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572호, 2023. 7. 25.> (해사안전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 「해사안전법」 제6조제1항 ”을 “ 「해사안전기본법」 제7조제1항 ”으로 한다.

④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9573호, 2023. 7. 25.> (해상교통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해사안전법」 제2조제6호”를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4호”로 하고, 제18조제5호 중 “「해사안전법」 제38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36조”로 한다.

⑨부터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0598호,2024. 12.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6. 21.] [대통령령 제35585호, 2025. 6. 2.,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 032 - 835 - 2986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항자에 대한 교육·훈련) 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선박소유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 6. 2.>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관서(해당 선박교통관제관서가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공사·작업·조사 등에 종사하는 선박의 운항자에 대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선박직원법」 제2조제4호의3에 따른 지정교육기관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

3.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강의·시청각교육 등 집합교육, 현장교육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5. 6. 2.>

제3조(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해 필요하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

1. 관할구역에서의 해상교통량, 선박 이동경로, 해양사고 현황

2. 관할구역에서의 레이더, 초단파 무선전화,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무선설비의 설치·운영 현황 및 계획

3. 관할구역에서 선박이 접안(接岸)하거나 계류(繫留)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현황 및 계획

4. 관할구역에서의 선박교통관제 시행의 필요성

5.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경찰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정·보완 필요성을 검토한 사항
 3.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의 요청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1항”은 “법 제9조제1항”으로, “기본계획”은 “시행계획”으로, “같은 조 제5항”은 “같은 조 제2항”으로 본다.
- ③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제6조(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기준)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역 중에서 유효한 레이더 탐지범위 내의 해상교통량 및 이동경로 등을 고려하여 선박교통관제 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개정 2024. 1. 16.>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등
2. 「해상교통안전법」 제7조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3.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

제7조(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6. 2.>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관서(이하 “선박교통관제관서”라 한다)의 사용명칭
 2. 관제대상선박이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 정박(碇泊), 계류 또는 정류(停留)하거나 해당 선박에 도선사가 승선·하선하는 때의 관제통신 방법
 3. 기상이 악화되거나 시계(視界)가 제한된 경우의 선박운항통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 6. 2.>

제8조(관제대상선박의 신고)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 6. 2.>

1. 항행 신고: 관제대상선박이 선박교통관제구역으로 들어오거나 선박교통관제구역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치를 통과하려는 경우 또는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정박 또는 계류 중인 관제대상선박이 항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신고
 - 가. 선박명
 - 나. 선박의 위치
 - 다. 목적지

라. 항행 예정 시각 및 항행 시작 시각(정박 또는 계류 중인 선박이 항행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정박 신고: 관제대상선박이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닻을 내려놓고 항행을 멈추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신고

가. 선박명

나. 정박 위치

다. 정박 시각

라.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계류 신고: 관제대상선박을 선박교통관제구역에 있는 계류시설[「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에 따른 계류시설을 말한다]에 붙들어 매어 놓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신고

가. 선박명

나. 계류 위치

다. 계류 시각

라.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제11조의2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선박교통관제관서에 통보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영해 밖 관제수역에서 해당 선박교통관제관서가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의 항행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6. 2.>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내용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선박교통관제구역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6. 2.>

제9조(관제통신의 제원)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박교통관제관서별 관제통신 제원(諸元)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 6. 2.>

1. 호출명칭
2. 관제통신시설
3. 조난·긴급·안전 통신용 채널
4. 관제통신용 채널
5. 운용시간

제10조(관제통신의 원칙 및 녹음)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란 영어를 말한다. <신설 2025. 6. 2.>

②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제대상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25. 6. 2.>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다음 각 목의 선박

가. 13명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

나. 가목 외의 선박으로서 총톤수 3천톤 이상의 선박

2. 「해운법」 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여객선

③ 선박교통관제관서와 제2항 각 호에 따른 선박의 선장(이하 “선박교통관제관서등”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관제통신을 한 날짜 및 시각과 함께 보존해야 한다.<개정 2025. 6. 2.>

④ 선박교통관제관서등은 제3항에 따라 관제통신을 녹음하려는 경우 전자적 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관제통신 녹음시설의 일시적인 고장 등으로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관제통신 녹음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기(手記)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25. 6. 2.>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보의 보존기간은 60일로 한다. 다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 6. 2.>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박교통관제관서의 관제통신 녹음 및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개정 2025. 6. 2.>

[제목개정 2025. 6. 2.]

제11조(선박교통관제사의 교육 및 평가) ① 선박교통관제사가 되려는 공무원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론 및 실습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선박교통관제사 기본교육(이하 “기본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② 선박교통관제사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중 가장 최근에 이수한 교육의 이수일부터 5년 6개월 이내에 이론 및 실습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선박교통관제사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다만,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기본교육

2. 보수교육

3.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교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는 이론 및 실습 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교육참여도를 그 대상으로 하고,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론 및 실습 내용에 대한 평가 점수와 교육참여도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40점 미만의 평가항목이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하며, 불합격 처리된 사람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및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1조의2(영해 밖 관제수역에서의 선박교통관제 요청)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해당 영해 밖 관제수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 통보해야 한다.

1. 선박명
2. 선박의 위치
3. 목적지
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6. 2.]

제12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관제시설의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제시설 기술개발 추진계획(이하 “기술개발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시행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으로 기술개발추진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2025. 6. 2.>

② 기술개발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21. 12. 14.>

1. 관제시설 기술개발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관제시설 기술개발의 고도화와 기술개발성과의 이전·활용에 관한 사항
3. 관제시설 기술개발 분야의 산업계·학계·연구기관 간의 협력 및 공동연구
4. 관제시설 기술개발사업의 세부운영계획
5. 그 밖에 관제시설 기술개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경찰청장은 기술개발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신설 2021. 12. 14.>

④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관제시설의 기술개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4.>

1. 관제시설 관련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의 분석
2. 관제시설의 성능 향상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3. 관제시설의 국산화를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4. 그 밖에 관제시설의 기술개발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1. 12. 14.]

제13조(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 ① 법 제2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1.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분석
2. 선박교통관제 관련 홍보 및 간행물의 발간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에 재정지원을 한 경우 해당 사업의 운영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 12. 14.>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1의2.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제시설의 설치 및 관리

2.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평가에 관한 업무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한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30752호, 2020. 6.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교통관제사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해사안전법」 제36조의2제1항·제3항 및 제4항과 종전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및 평가를 통과한 사람은 각각 제11조에 따라 해당 교육을 이수한 사람 및 해당 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해사안전법」 제36조의2제1항·제3항 및 제4항과 종전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교육은 제11조에 따른 교육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해사안전법」 제3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종전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위반하여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2호 중 “징수(같은 조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2 제2호거목 및 너목을 각각 삭제한다.

②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항제5호를 삭제한다.

별표 5 제2호너목부터 러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30876호, 2020. 7. 28.> (항만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나목 중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을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로, “같은 목(4)”를 “같은 목 4)”로 한다.

⑪부터 3!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32216호, 2021. 12.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53호, 2024. 1. 16.>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 「해사안전법」 제10조 ”를 “ 「해상교통안전법」 제7조 ”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35585호, 2025. 6. 2.>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운항자 교육·훈련의 내용(제2조제1항 관련)

| 구분 | 주요 내용 |
|---------------------------|---|
| 1. 선박교통관제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선박교통관제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가.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나. 국제항로표지협회 선박교통관제 매뉴얼
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
| 2. 통신절차 및 정보 교환 방법 | 가. 선박교통관제관서별 신고 절차
나. 일반통신, 긴급통신, 조난통신 및 안전통신의 절차 및 정보 교환 방법
다. 해양사고 발생 시 보고 및 대응 절차 |
| 3. 선박교통관제 관련 규정 및 제반 준수사항 | 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나. 관제대상선박의 범위
다.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의 의무
라. 관제통신의 녹음
마. 관제업무 절차
바. 선박교통관제사의 권한 |
| 4. 국내 선박교통관제 운영 현황 | 가. 선박교통관제관서별 관제구역
나. 선박교통관제관서별 통신주파수 |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6.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27조 제1항제1호 | 90 | 150 | 300 |
| 나.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갖추지 않거나 관제통신을 청취·응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 제1항제2호 | | | |
| 1) 무선설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 | 300 | | |
| 2) 관제통신을 청취·응답하지 않은 경우 | | 90 | 150 | 300 |
| 다.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 법 제27조 | 60 | 100 | 200 |

| | | | | |
|---|---------------|----|-----|-----|
|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제2항 | | | |
| 라.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의 신고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 제1항제3호 | 90 | 150 | 300 |
| 마.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 제1항제4호 | 90 | 150 | 300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6. 21.] [해양수산부령 제740호, 2025. 6. 9.,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 032 - 835 - 298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항자에 대한 교육·훈련)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2. 5.>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항로에 관한 사항
2. 「해상교통안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안에서의 항로지정제도에 관한 사항
3.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제3조(선박교통관제관서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이하 “선박교통관제관서”라 한다)는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에 따른 해상교통관제센터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4조(관제대상선박의 무선설비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와 관제통신 주파수”란 초단파 무선전화 및 별표 1에 따른 관제통신 주파수를 말한다.

<개정 2025. 6. 9.>

②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는 「전파법」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제5조(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6. 9.>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전파법」 제70조에 따른 무선종사자 중 해상무선통신사 또는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5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취득한 후 면허와 관련 있는 직무분야에서의 승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개설한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면허를 취득한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무선설비산업기사 또는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②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21. 12. 14., 2025. 6. 9.>

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6. 9.>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가. 연혁·조직 및 예산명세

나. 교육시설 현황(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교육시설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를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가. 교육강사의 이름, 학력·경력 등 자격요건

나. 교육강사별 담당 교육분야 및 교육시간

다. 교육·평가방법

라. 연간 교육계획

3.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신설 2025. 6. 9.>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③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5. 6. 9.>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별표 2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5. 6. 9.>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교육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 6. 9.>

⑥ 해양경찰청장은 5년마다 전문교육기관이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해야 한다.<개정 2025. 6. 9.>

⑦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심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개정 2025. 6. 9.>

제7조(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 법 제18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관제업무 관련 법규 위반의 감시·적발 및 관계기관의 위법 선박 감시·적발 지원
2.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의 해양사고 발생 사실을 최초로 접수한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에 해당 사실 전파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에의 자료 입력
4. 그 밖에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업무

제7조의2(영해 밖 관제수역의 선박교통관제)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상에서의 공사 또는 작업에 관한 사항
2. 해상사격 등 해상훈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6. 9.]

제8조(관제업무 절차) ① 법 제19조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단계별 절차에 따라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한다. <개정 2025. 6. 9.>

1. 1단계(관찰확인):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관제대상선박이 해양사고 위험이 있는지 관찰 확인
2. 2단계(정보제공): 선박교통관제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제대상선박에서 요구하는 경우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
3. 3단계(조언): 관제대상선박에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한 조치에 관한 조언
4. 4단계(지시): 관제대상선박이 명백한 해양사고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 또는 안전조치를 지시

②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절차의 세부 사항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따른 해역별 특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9조(관제시설의 설치·관리) ① 해양경찰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관제시설(이하 “관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1. 해상교통량 등 선박교통 상황
2. 지리적 조건 등 설치지역의 환경
3. 관제시설의 비상운용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관제시설의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유지·보수를 실시해야 한다.

1. 정기점검: 관제시설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한 주기마다 실시하는 점검

2. 수시점검: 관제시설의 고장 또는 성능 저하가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
3. 조정·정비: 제1호 및 제2호의 점검 결과에 따라 원래의 기능·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제시설을 변경·수리·교체하는 작업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제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0조(관제시설의 기술기준)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관제시설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레이더: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으로 개설허가가 가능한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해야 하며, 관제대상선박을 탐지·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2. 초단파 무선전화: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으로 개설허가가 가능한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해야 하며, 관제대상선박과 음성통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선박자동식별장치: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으로 개설허가가 가능한 161.975메가헤르츠(MHz)와 162.025메가헤르츠(MHz)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해야 하며, 관제대상선박의 위치 등 정보를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4. 선박교통관제 운영 시스템: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관제시설 등에서 수신한 정보를 통합·전시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관제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부칙 <제414호, 2020. 6.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다목 중 “「해사안전법」 제36조의2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또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로 한다.

②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8호 중 “「해사안전법」 제36조”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③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513호,2021. 12. 14.>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2호,2024. 2. 5.>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 「해사안전법」 제10조제2항 ”을 “ 「해상교통안전법」 제7조제2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 「해사안전법」 제31조제1항 ”을 “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 ”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40호,2025.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관제통신 주파수(제4조제1항 관련)

| 연번 | 채널번호(CH) | 통신주파수(MHz) | 통신방식 |
|----|----------|-------------------------|------|
| 1 | 06 | 156.300 | 단신 |
| 2 | 08 | 156.400 | 단신 |
| 3 | 09 | 156.450 | 단신 |
| 4 | 10 | 156.500 | 단신 |
| 5 | 11 | 156.550 | 단신 |
| 6 | 12 | 156.600 | 단신 |
| 7 | 13 | 156.650 | 단신 |
| 8 | 14 | 156.700 | 단신 |
| 9 | 15 | 156.750 | 단신 |
| 10 | 16 | 156.800 | 단신 |
| 11 | 17 | 156.850 | 단신 |
| 12 | 20 | (수신)157.000 (송신)161.600 | 복신 |
| 13 | 22 | (수신)157.100 (송신)161.700 | 복신 |
| 14 | 67 | 156.375 | 단신 |
| 15 | 68 | 156.425 | 단신 |
| 16 | 69 | 156.475 | 단신 |
| 17 | 70 | 156.525 | 단신 |
| 18 | 71 | 156.575 | 단신 |
| 19 | 72 | 156.625 | 단신 |
| 20 | 73 | 156.675 | 단신 |
| 21 | 74 | 156.725 | 단신 |
| 22 | 75 | 156.775 | 단신 |
| 23 | 76 | 156.825 | 단신 |
| 24 | 77 | 156.875 | 단신 |
| 25 | 87 | 157.375 | 단신 |
| 26 | 88 | 157.425 | 단신 |

비고

1. 채널번호 15번 및 17번은 해양방제업무용으로 사용한다.
2. 채널번호 70번은 조난·안전 및 호출을 위한 디지털선택호출용으로 사용한다.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6. 9.>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6조제2항 관련)

1. 조직 및 인력 기준

가. 조직: 교육·훈련·상담·자문·지도를 수행하는 상설 전담조직이 있어야 한다.

나. 인력기준

1) 교육강사는 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과정을 총괄하는 책임교수와 교육과정별 교육분야를 담당하는 전임교수로 구분한다.

2) 책임교수와 전임교수의 자격은 각각 다음과 같다.

가) 책임교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선박직원법」 제2조제4호의3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조교수 이상으로 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분야를 5년 이상 교육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전임교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선박직원법」 제2조제4호의3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조교수 이상으로 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분야를 3년 이상 교육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시설 및 장비 기준

가. 강의실, 브리핑실, 실습실 등 선박교통관제사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것. 이 경우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교육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건축 관계 법령, 「소음·진동관리법」 및 「소방법」 등 관련 법령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화장실, 급수시설 등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라. 다음의 장비를 포함한 모의 선박교통관제운영 시스템 등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이 경우 교육 장비에 대한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 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마. 그 밖에 전력설비 등 교육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 장비명 | 보유기준 |
|---|------|
| 음성처리 서버 | 1대 |
| 초단파무선전화/디지털선택호출 송수신장비
(VHF/DSC, 헤드셋 및 스피커를 포함한다) | 5대 |
| 선박교통관제 운영석 | 5대 |
| 평가시스템 서버 | 1대 |
| 통합감시제어 서버 | 1대 |

비고

1. “음성처리 서버”란 교육생 간에 가상으로 음성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환기 역할을 하는 장비를 말한다.
2. “초단파무선전화/디지털선택호출 송수신장비(VHF/DSC, 헤드셋 및 스피커를 포함한다)”란 교육생 간의 음성통신에 사용되는 장비를 말한다.
3. “선박교통관제 운영석”이란 선박자동식별장치나 레이더 타겟 등을 이용하여 선박 동정을 감시하고 충돌위험을 파악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4. “평가시스템 서버”란 교육생의 모의 선박교통관제운영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5. “통합감시제어 서버”란 교수가 교육생의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실행 및 관리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3. 교육과정의 운영 기준

가. 교육계획: 전문교육기관은 교수, 시설 및 장비 등을 고려한 연간 최대 교육인원을 반영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나. 교육과정: 전문교육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 교육분야 및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 교육과정(교육시간) | 교육분야(교육시간) |
|----------------------|--|
| 선박교통관제사
기본교육(300) |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80), 법적체계(25), 선박교통관제 서비스 제공(80), 항해지식(60), 관제설비(20), 인적요소(10), 비상상황(25) |
| 선박교통관제사
보수교육(60) | 언어학(9), 교통관리학(18), 관제설비학(6), 초단파무선통신(6), 인간학(10), 비상관제(11) |
| 선임선박교통 | 의사소통 및 리더십(14), 당직관리(8), 선박교통관제 서비스 |

| | |
|-----------------------|--|
| 관제사 교육(60) | 제공(16), 비상상황(10), 인적요소(12) |
| 현장직무교육 강사
양성교육(30) | 선박교통관제관서 교육프로그램 개발(3), 교육생 특별프로그램 준비(3), 현장직무교육의 진행(6), 교육생 평가(10), 교육의
이수(8) |

비고

1. 교육분야별 교육시간은 100분의 35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교육과정별 관제업무 실습 시간은 전체 교육시간의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6. 9.>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 | |
|-----|---------|-------------|
| 신청자 | 기관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담당자 성명 | 담당자 전자우편주소 |

| | |
|---------------|--------------------|
| 지정 신청
교육과정 | [] 선박교통관제사 기본교육 |
| | [] 선박교통관제사 보수교육 |
| | [] 선입선박교통관제사 교육 |
| | [] 현장직무교육 강사 양성교육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가. 연혁·조직 및 예산명세
나. 교육시설 현황(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교육시설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를 포함합니다)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가. 교육강사의 이름, 학력·경력 등 자격요건
나. 교육강사별 담당 교육분야 및 교육시간
다. 교육·평가방법
라. 연간 교육계획
3.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서류심사 | → | 결 재 | → | 전문교육기관 지정서 발급 |
|--------|---|-----|---|------|---|-----|---|---------------|

신청자 처리기관
(해양경찰청장)

※ 서류심사 과정 중 자료 보완이 필요할 경우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6. 9.>

제 호

전문교육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사업자(법인)등록번호:
3.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4.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5. 지정 교육과정: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해양경찰청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 120g/㎡]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1. 13.] [법률 제21638호, 2026. 5. 12.,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 - 일반 사항) 051 - 773 - 5775, 5781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 - 예선) 051 - 773 - 5772, 5771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 - 위험물의 관리 등) 051 - 773 - 5783, 5791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 - 선박연료공급선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051 - 773 - 5774, 577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항·출항에 대한 지원과 선박운항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3., 2020. 1. 29., 2020. 2. 18.>

1. “무역항”이란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항만을 말한다.
2.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란 무역항의 수상구역과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의 수역 시설 중 수상구역 밖의 수역시설로서 관리청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 2의2. “관리청”이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정관청을 말한다.
 - 가.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해양수산부장관
 - 나.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3. “선박”이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4. “예선”(曳船)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曳引船)(이하 “예인선”이라 한다) 중 무역항에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안(離岸)·접안(接岸)·계류(繫留)를 보조하는 선박을 말한다.
5. “우선피항선”(優先避航船)이란 주로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선박을 말한다.
 - 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舢舨)[예인선이 부선을 끌거나 밀고 있는 경우의 예인선 및 부선을 포함하되, 예인선에 결합되어 운항하는 압항부선(押航舢舨)은 제외한다]
 - 나. 주로 노와 샷대로 운전하는 선박
 - 다. 예선

라.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

마.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폐기물해양배출업으로 등록한 선박은 제외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

6. “정박”(碇泊)이란 선박이 해상에서 닻을 바다 밑바닥에 내려놓고 운항을 멈추는 것을 말한다.

7. “정박지”(碇泊地)란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8. “정류”(停留)란 선박이 해상에서 일시적으로 운항을 멈추는 것을 말한다.

9. “계류”란 선박을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어 놓는 것을 말한다.

10. “계선”(繫船)이란 선박이 운항을 중지하고 정박하거나 계류하는 것을 말한다.

11. “항로”란 선박의 출입 통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수로를 말한다.

12. “위험물”이란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거나 인체 또는 해양환경에 해를 끼치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선박의 항행 또는 인명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선박에서 사용하는 위험물은 제외한다.

13. “위험물취급자”란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운송선박의 선장 및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람을 말한다.

14. 삭제<2019. 12. 3.>

15. 삭제<2019. 12. 3.>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의 선박 입항·출항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입항·출항 및 정박

제4조(출입 신고)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이하 이 조에서 “선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선박은 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2024. 10. 22.>

1.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2. 해양사고구조에 사용되는 선박

3.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중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

4.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 대상이 되는 어선

5. 그 밖에 공공목적이나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9. 1. 15., 2020. 2. 18.>

③ 관리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국가보안기관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경우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입항 신고 없이 진입한 선박으로서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출입에 관한 특별한 필요가 인정되는 선박에 대하여 직권으로 해당 선박의 입항 사실을 확인·기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은 제1항에 따라 출입 신고를 하고 제2항에 따라 수리가 된 것으로 보며, 관계기관의 장은 관리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26. 5. 12.>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에는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 1. 15., 2020. 2. 18., 2026. 5. 12.>

제5조(정박지의 사용 등) ① 관리청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정박하는 선박의 종류·톤수·흘수(吃水) 또는 적재물의 종류에 따른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②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정박하려는 선박(우선피항선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에 정박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우선피항선은 다른 선박의 항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정박하거나 정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가 아닌 곳에 정박한 선박의 선장은 즉시 그 사실을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18.>

제6조(정박의 제한 및 방법 등) ① 선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정박하거나 정류하지 못한다.

1. 부두·잔교(棧橋)·안벽(岸壁)·계선부표·돌핀 및 선거(船渠)의 부근 수역

2. 하천, 운하 및 그 밖의 좁은 수로와 계류장(繫留場) 입구의 부근 수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정박하거나 정류할 수 있다.

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2. 선박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선박을 조종할 수 없는 경우

3. 인명을 구조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4. 제4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공사 또는 작업에 사용하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선박의 정박 또는 정류의 제한 외에 무역항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의 정박 또는 정류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0. 2. 18.>
- ④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정박하는 선박은 지체 없이 예비용 닻을 내릴 수 있도록 닻 고정장치를 해제하고, 동력선은 즉시 운항할 수 있도록 기관의 상태를 유지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관리청은 정박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정박하는 선박에 대하여 정박 장소 또는 방법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0. 2. 18.>

- 제7조(선박의 계선 신고 등)** ①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계선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9. 1. 15., 2020. 2. 18.>
 - ③ 제1항에 따라 선박을 계선하려는 자는 관리청이 지정한 장소에 그 선박을 계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2020. 2. 18.>
 - ④ 관리청은 계선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안전 유지에 필요한 인원의 선원을 승선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9. 1. 15., 2020. 2. 18.>

- 제8조(선박의 이동명령)**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관리청이 정하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9., 2020. 2. 18.>
1. 무역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전시·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의2(선박의 피항명령 등)** ① 관리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다른 구역으로 피항할 것을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명할 수 있다.
- ② 관리청은 접안 또는 정박 금지구역의 설정 등 제1항에 따른 피항명령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해운법」에 따른 해운업자
 2.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2. 10. 18.]

- 제9조(선박교통의 제한)** ① 관리청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로 또는 구역을 지정하여 선박교통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②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항로 또는 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항로 또는 구역의 위치, 제한, 금지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18.>

제3장 항로 및 항법

제10조(항로 지정 및 준수) ① 관리청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역항과 무역항의 수상구역 밖의 수로를 항로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② 우선피항선 외의 선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는 경우 또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항로를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항로에서의 정박 등 금지) ① 선장은 항로에 선박을 정박 또는 정류시키거나 예인되는 선박 또는 부유물을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 29.>

②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선박을 항로에 정박시키거나 정류시키려는 자는 그 사실을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해상교통안전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조종불능선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18., 2023. 7. 25.>

제12조(항로에서의 항법) ① 모든 선박은 항로에서 다음 각 호의 항법에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25.>

1. 항로 밖에서 항로에 들어오거나 항로에서 항로 밖으로 나가는 선박은 항로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 항행할 것
2. 항로에서 다른 선박과 나란히 항행하지 아니할 것
3. 항로에서 다른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항행할 것
4. 항로에서 다른 선박을 추월하지 아니할 것. 다만, 추월하려는 선박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안전하게 추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74조제5항 및 78조에 따른 방법으로 추월할 것
5. 항로를 항행하는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운송선박(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선박 중 급유선은 제외한다) 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흡수제약선(吃水制約船)의 진로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6.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범선은 항로에서 지그재그(zigzag)로 항행하지 아니할 것

② 관리청은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따로 항로에서의 항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은

이에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18.>

제13조(방파제 부근에서의 항법)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입항하는 선박이 방파제 입구 등에서 출항하는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파제 밖에서 출항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제14조(부두등 부근에서의 항법) 선박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해안으로 길게 뻗어 나온 육지 부분, 부두, 방파제 등 인공시설물의 튀어나온 부분 또는 정박 중인 선박(이하 이 조에서 “부두등”이라 한다)을 오른쪽 뱃전에 두고 항행할 때에는 부두등에 접근하여 항행하고, 부두등을 왼쪽 뱃전에 두고 항행할 때에는 멀리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한다.

제15조(예인선 등의 항법) ① 예인선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다른 선박을 끌고 항행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범선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항행할 때에는 돛을 줄이거나 예인선이 범선을 끌고 가게 하여야 한다.

제16조(진로방해의 금지) ① 우선피항선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라 공사 등의 허가를 받은 선박과 제42조제1항에 따라 선박경기 등의 행사를 허가받은 선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속력 등의 제한) ① 선박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을 항행할 때에는 다른 선박에 위험을 주지 아니할 정도의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이 빠른 속도로 항행하여 다른 선박의 안전 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대하여는 관리청에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의 선박 항행 최고속력을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2020. 2. 18.>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 항행 최고속력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은 고시된 항행 최고속력의 범위에서 항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18.>

제18조(항행 선박 간의 거리)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2척 이상의 선박이 항행할 때에는 서로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장 삭제 <2019. 12. 3.>

제19조 삭제 <2019. 12. 3.>

제20조 삭제 <2019. 12. 3.>

제21조 삭제 <2019. 12. 3.>

제22조 삭제 <2019. 12. 3.>

제5장 예선

제23조(예선의 사용의무) ① 관리청은 항만시설을 보호하고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 예선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예선을 사용하여야 하는 선박이 그 규모에 맞는 예선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예선의 사용기준(이하 “예선사용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제24조(예선업의 등록 등) ① 무역항에서 예선업무를 하는 사업(이하 “예선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2. 18.>

② 제1항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은 무역항별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1., 2020. 2. 18.>

1. 예선은 자기소유예선[자기 명의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裸傭船) 또는 자기 소유로 약정된 리스예선을 포함한다]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역항별 예선보유기준에 따른 마력[이하 “예항력”(曳航力)이라 한다]과 척수가 적합할 것
2. 예선추진기형은 전(全)방향추진기형일 것
3. 예선에 소화설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것
4. 예선의 선령(船齡)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되, 등록 또는 변경등록 당시 해당 예선의 선령이 12년 이하일 것. 다만, 관리청이 예선 수요가 적어 사업의 수익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무역항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는 선박의 경우와 해양환경공단이 「해양환경관리법」 제67조에 따라 해양오염방제에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선박을 배치하고자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역항별 예선보유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무역항에 대하여 하나의 예선업으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

1. 1개의 무역항에 출입하는 선박의 수가 적은 경우
2. 2개 이상의 무역항이 인접한 경우

④ 관리청은 예선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선업이 등록된 무역항의 예선이 아닌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2020. 2. 18.>

⑤ 제4항에 따라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을 이용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7. 3. 21.>

제25조(예선업의 등록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예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7. 10. 31.>

1. 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류 또는 발전용 석탄의 화주(貨主)
 2. 「해운법」에 따른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와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
 3. 조선사업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하 “관계법인”이라 한다) 및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
 5. 제26조제1호 또는 제5호의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② 관계법인과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28조에 따라 예선업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 ④ 관리청은 안전사고의 방지 및 예선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항만 내 예선의 대기장소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예선업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신설 2017. 10. 31., 2020. 2. 18.>

제25조의2(예선의 수급조절)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선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예선 수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예선운영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 예선업 경기(景氣)의 동향과 전망
 2. 항만별 예선업의 여건 및 운영 실태
 3. 항만별·마력별 예선 수급 상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예선 수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선 수급계획을 수립하였으면 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③ 관리청은 수립된 예선 수급계획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20. 2. 18.>
- ④ 그 밖에 예선 수급계획 및 수급조절 절차, 기존예선의 대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0. 31.]

제25조의3(예선업자에 대한 서비스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선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라 예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선운영의 안전성 및 이용자의 만족도를 평가(이하 “서비스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관리청은 서비스평가 결과가 우수한 예선업자에 대하여 포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0. 2. 18.>

- ③ 관리청은 서비스평가 결과가 부진한 예선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선의 증선 등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개정 2020. 2. 18.>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평가의 방법, 제2항에 따른 우수한 예선업자의 기준, 제3항에 따른 부진한 예선업자의 기준 등에 대하여 제30조에 따른 예선운영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평가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평가의 방법,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 또는 부진한 예선업자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선서비스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비스평가의 방법과 절차, 예선서비스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0. 31.]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관리청은 예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1., 2020. 2.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3의2.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예선의 사용 요청을 거절하거나 예항력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4의2. 제29조의2제1항의 단서를 위반하여 예선을 공동으로 배정하는 경우
5. 제4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7조(과징금 처분) ① 관리청은 예선업자가 제26조제4호에 대하여 사업을 정지시켜야 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정지시키면 예선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할 예선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관리청은 예선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2020. 3. 24.>

제28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예선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1. 예선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예선업자가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예선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제29조(예선업자의 준수사항) ① 예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선의 사용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선박의 운항이 제한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예선업무를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
 3. 제30조에 따른 예선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예선업자는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각 예선이 등록 또는 변경등록 당시의 예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선이 적정한 예항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9조의2(예선의 배정 방법) ① 예선의 사용 요청을 받은 예선업자는 단독으로 예선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선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예선업자가 예선 사용자 등에게 예선 공동 배정의 방법·내용을 미리 공표한 경우에는 예선업자 간 공동으로 예선을 배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예선 공동 배정의 방법·내용, 공표의 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0. 31.]

제30조(예선운영협의회) ① 관리청은 예선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예선업을 대표하는 자, 예선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및 해운항만전문가가 참여하는 예선운영협의회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 ② 제1항에 따른 예선운영협의회는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을 하거나 예선운영협의회에 재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 10. 31., 2020. 2. 18.>
1. 예선운영협의회에서 예선운영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예선운영협의회는 협의 결과가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거나 예선 사용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1조(예선업의 적용 제외) 조선소에서 건조·수리 또는 시험 운항할 목적으로 선박 등을 이동시키거나 운항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유·관리하는 예선에 대하여는 예선업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장 위험물의 관리 등

- 제32조(위험물의 반입)** ① 위험물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들여오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2020. 2. 18.>
-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무역항 및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안전, 오염방지 및 저장능력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들여올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 및 수량을 제한하거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2020. 2. 18.>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1.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2.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
 3.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해운대리점업을 등록한 자
 4.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수입 신고 대상 물품의 화주

제33조(위험물운송선박의 정박 등)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운송선박은 관리청이 지정한 장소가 아닌 곳에 정박하거나 정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18.>

- 제34조(위험물의 하역)**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2. 18.>
- ② 관리청은 무역항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 ③ 관리청은 기상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하역을 금지 또는 중지하게 하거나 무역항의 수상구역등 외의 장소를 지정하여 하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 ④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 아닌 장소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있는 자로 본다.

- 제35조(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등)**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취급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위험물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자(이하 “위험물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확보 및 배치.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보유한 안전관리 전문업체로 하여금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 운송선박의 부두 이안·접안 시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현장 배치
 3. 위험물의 특성에 맞는 소화장비의 비치
 4. 위험표지 및 출입통제시설의 설치
 5. 선박과 육상 간의 통신수단 확보
 6.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
- ②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7. 10. 31.>
- ③ 위험물취급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고용한 때에는 그 해당자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물취급자는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신설 2017. 10. 31.>
- ④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 보유기준 및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10. 31.>
- ⑤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위험물취급자에게 시설·인원·장비 등의 보강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7. 10. 31., 2020. 2. 18.>
- ⑥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을 운송하는 총톤수 5만톤 이상의 선박이 접안하는 돌핀 계류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하여 하역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장비를 갖추어야 한다.<신설 2017. 10. 31.>

제35조의2(위험물 관련 자료제출의 요청) ① 관리청은 위험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험물 및 위험물을 수입하는 선박의 국내 입항일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 제출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0. 18.]

제36조(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② 제1항의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교육내용 등 교육기관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교육기관의 교육계획 또는 실적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2. 교육실적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5. 해양수산부장관이 교육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7조(선박수리의 허가 등) ① 선장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선박은 기관실, 연료탱크,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내 위험구역에서 수리작업을 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2. 18.>

1. 위험물을 저장·운송하는 선박과 위험물을 하역한 후에도 인화성 물질 또는 폭발성 가스가 남아 있어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선박(이하 “위험물운송선박”이라 한다)
 2.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위험물운송선박은 제외한다)
-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1. 화재·폭발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수리하려는 경우
 2. 용접공 등 수리작업을 할 사람의 자격이 부적절한 경우
 3. 화재·폭발 등의 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선박수리로 인하여 인근의 선박 및 항만시설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수리장소 및 수리시기 등이 항만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위험물운송선박의 경우 수리하려는 구역에 인화성 물질 또는 폭발성 가스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 ③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험구역 밖에서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는 경우에 그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 ④ 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2020. 2. 18.>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박을 수리하려는 자는 그 선박을 관리청이 지정한 장소에 정박하거나 계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2020. 2. 18.>
- ⑥ 관리청은 수리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2020. 2. 18.>

제7장 수로의 보전

제3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밖 10킬로미터 이내의 수면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는 흙·돌·나무·어구(漁具) 등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②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석탄·돌·벽돌 등 흩어지기 쉬운 물건을 하역하는 자는 그 물건이 수면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리거나 제2항을 위반하여 흩어지기 쉬운 물건을 수면에 떨어뜨린 자에게 그 폐기물 또는 물건을 제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제39조(해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의 조치)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해양사고·화재 등의 재난으로 인하여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무역항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조난선(遭難船)의 선장은 즉시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1.>

② 제1항에 따른 조난선의 선장이 같은 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그 조치에 들어간 비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제3항에 따른 조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방법 및 납부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장애물의 제거) ① 관리청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이하 “장애물”이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② 관리청은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③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1.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역시설을 반복적, 상습적으로 불법 점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어 신속하게 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그 물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하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건을

처분하여 비용에 충당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조치는 선박교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⑥ 관리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거된 장애물을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처리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장애물의 처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2020. 2. 18.>

⑦ 관리청은 제6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장애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⑧ 제6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장애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⑨ 제6항에 따른 장애물의 보관 및 처리, 장애물 처리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공사 등의 허가)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또는 작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2. 18.>

② 관리청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선박교통의 안전과 화물의 보전 및 무역항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제42조(선박경기 등 행사의 허가)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경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2. 18.>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1. 행사로 인하여 선박의 충돌, 좌초, 침몰 등 안전사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행사의 장소와 시간 등이 항만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선박의 출입 등 항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다른 선박이 화물을 싣고 내리거나 보존하는 데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2. 18.>

제43조(부유물에 대한 허가)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목재 등 선박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되는 부유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2. 18.>

1. 부유물을 수상(水上)에 띄워 놓으려는 자
 2. 부유물을 선박 등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거나 운반하려는 자
-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제44조(어로의 제한)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漁撈)(어구 등의 설치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장 불빛 및 신호 <개정 2020. 1. 29.>

제45조(불빛의 제한) ①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강력한 불빛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불빛을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그 빛을 줄이거나 가리개를 씌우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20. 2. 18.>
[제목개정 2020. 1. 29.]

제46조(기적 등의 제한) ① 선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기적(汽笛)이나 사이렌을 울려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기적이나 사이렌을 갖춘 선박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선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를 알리는 경보를 울려야 한다.

제9장 보칙

제47조(출항의 중지) 관리청은 선박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선박의 출항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0. 2. 18.>

제48조(검사·확인 등)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선박의 소유자·선장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출석 또는 진술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선박이나 사무실·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2019. 12. 3., 2020. 2. 18.>

1. 제4조,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제1항·제4항, 제7조, 제10조제2항, 제11조, 제23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 제37조, 제40조제1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3조, 제44조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적정예선 척수 산정 및 예선업계의 경영여건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자격, 직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박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확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49조(개선명령) ① 관리청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확인 결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선장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2020. 2. 18.>

1. 시설의 보강 및 대체(代替)
2. 공사 또는 작업의 중지
3. 인원의 보강
4. 장애물의 제거
5. 선박의 이동
6. 선박 척수의 제한
7.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청은 예선업자 등이 다른 예선업자의 사업이나 다른 예선 사용자의 예선사용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거나 예선 사용자의 권익을 침해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예선업자 등에 대하여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예선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31., 2020. 2. 18.>

제50조(항만운영정보시스템의 사용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입항·출항 선박의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의 처리 등을 위하여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운영정보시스템과 사용자의 전자문서를 중계하는 망사업자(이하 “중계망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중계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자문서 중계망시설의 운영과 중개사업
2. 전자문서 중계망시설과 다른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사업
3. 선박 입항과 출항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 처리 표준화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선박 입항과 출항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중계망사업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감독을 위반한 경우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중계망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5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1항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2.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사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제52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1. 제26조에 따른 예선업 등록의 취소
2. 제36조제4항에 따른 지정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3. 제50조제4항에 따른 중계망사업자 지정의 취소

제5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17. 10. 31., 2020. 2. 18.>

② 이 법에 따른 관리청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0. 2. 18.>

③ 관리청의 제4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2020. 2. 18.>

제10장 벌칙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예선업을 한 자

제5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2019. 1. 15., 2026. 5. 12.>

1.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거나 기항지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출입허가를 받은 자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선을 사용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2항에 따른 예선사용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예선을 사용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선의 사용 요청을 거절한 자
5. 제33조에 따른 지정장소 외에 위험물운송선박을 정박하거나 정류한 자
6. 제35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5조제5항에 따른 시설·인원·장비 등의 보강 또는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3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을 수리한 자
9.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린 자
10. 제3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또는 물건의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제47조에 따른 출항 중지 처분을 위반한 자
12. 제4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2019. 1. 15., 2020. 1. 29., 2022. 10. 18.>

1. 제4조제1항에 따른 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2.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정박구역 및 정박지가 아닌 곳에 정박한 자
3.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소에 선박을 정박하거나 정류한 자
4. 제6조제5항에 따른 정박 장소 또는 방법의 변경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7조제4항에 따른 선원의 승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6. 제8조에 따른 이동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6의2.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피항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로 또는 구역에서 선박교통의 제한 또는 금지 처분을 따르지 아니한 자
8. 제10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지정·고시한 항로를 따라 항행하지 아니한 자
9.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로에 선박을 정박 또는 정류시키거나 예인되는 선박 또는 부유물을 항로에 내버려둔 자
- 9의2. 삭제 <2019. 12. 3.>
10. 제32조제3항에 따른 위험물의 종류 및 수량의 제한 또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제34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 하역을 위한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12. 제34조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3.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역의 금지 또는 중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하역을 한 자
- 13의2. 제35조제6항에 따른 안전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
14. 제37조제5항에 따른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 선박을 정박하거나 계류한 자
15. 제37조제6항에 따른 안전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16.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흩어지기 쉬운 물건이 수면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4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18. 제43조제2항에 따른 안전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1. 제12조제1항에 따른 항법을 위반하여 항행한 자
2. 제4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 또는 작업을 한 자
3. 제41조제2항에 따른 선박교통의 안전과 화물의 보전 및 무역항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4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경기 등의 행사를 한 자
5. 제44조를 위반하여 어로를 한 자
6. 제4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불빛을 줄이지 아니하거나 가리개를 씌우지 아니한 자
7. 제49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5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0. 31.>

1. 제11조제2항에 따른 신고 및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9. 12. 3.>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
4. 제24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예선업을 한 자
5.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1. 15.>

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우선피항선을 정박하거나 정류한 자
2. 제5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6조제4항에 따른 정박선박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정장소에 계선하지 아니한 자
6. 제12조제2항에 따른 항법 등에 관한 고시를 위반하여 항행한 자
7. 제13조에 따른 항법을 위반하여 항행한 자
8. 제14조에 따른 항법을 위반하여 항행한 자

9.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인선을 항행한 자
 10.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범선을 항행한 자
 11. 제16조를 위반하여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한 자
 12.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속력 제한을 위반하여 항행한 자
 13. 제18조를 위반하여 다른 선박과의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행한 자
 14. 삭제<2017. 10. 31.>
 15. 제32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32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험물을 통지받지 못하거나 거짓으로 통지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 15의2.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16. 제37조제3항에 따른 수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39조제1항에 따른 표지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선장
 18. 제40조제1항에 따른 장애물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9.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강력한 불빛을 사용한 자
 20.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적이나 사이렌을 울린 자
 21.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재경보를 울리지 아니한 자
 22. 제48조제1항에 따른 출석·진술이나 서류제출·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서류 제출·보고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부과·징수한다.
- .<개정 2017. 7. 26., 2019. 12. 3., 2020. 2. 18.>

부칙 <제13186호, 2015.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개항질서법은 폐지한다.

제3조(선박의 정박 또는 정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박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서 정박하거나 정류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개항질서법」 및 「항만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예선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법」 제32조에 따라 예선업을 등록한 자는 제24조에 따라 예선업을 등록한 자로 본다.

제6조(예선운영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법」 제40조에 따라 설치된 예선운영협의회는 제30조에 따라 설치된 예선운영협의회로 본다.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개항질서법」 및 「항만법」에 따른다.

-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6항제2호가목 중 “「개항질서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②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34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38조만 해당한다)
- ③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법」 제32조”를 각각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 ④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1항 단서 중 “「개항질서법」 제5조에 따른 입·출항 신고”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입 신고”로 한다.
-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4조제1항제7호 본문 중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제35조, 제38조”를 “제30조, 제31조”로 한다.
- 제144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4조, 제26조 및 제27조 제214조의2제3항 중 “제20조, 제32조제2항제4호 단서”를 “제20조”로 한다.
- 제214조의2제5항 중 “제31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40조제2항”을 “제31조제3항”으로 한다.
- 제214조의2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4호 단서 및 제30조제1항·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 ⑦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221조제1항 중 “「개항질서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을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개항”을 “무역항”으로 한다.
- ⑥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6호 및 제32조부터 제4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장·예선”을 “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마목을 삭제한다.
- 제86조제2호를 삭제한다.
- 제97조제5호 중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를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98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⑦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개항질서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개항질서법」에 따른 개항의항계안등”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한다.

⑨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개항질서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개항질서법」 제3조에 따른 항계로 동일 항계 내”를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중 수상구역으로 동일 수상구역 내”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개항질서법」, 「항만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개항질서법」, 「항만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732호, 2017. 3.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0>까지 생략

<24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42조제3항, 제53조제1항 및 제59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제21조제3항 및 제22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총리령으로”를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시행하는”을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시행하는”으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로 한다.

<24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003호, 2017. 10.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제4호, 제35조제6항 및 제56조제13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선업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예선업의 등록이 취소되어 같은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선의 수급조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공포 전 예선 건조 등을 위한 계약체결 및 일부 대금을 지급한 후, 이 법 공포 후 1년 이내에 예선업 등록(변경등록 포함)을 신청한 경우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예선 배정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예선업자 간 공동으로 예선을 배정하고 있는 예선업자는 제29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선을 공동으로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예선 공동 배정의 방법·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009호, 2017. 10. 31.> (항로표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항로표지법」 제2조제1항제1호”를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④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5012호, 2017. 10. 31.> (해양환경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 단서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6280호, 2019. 1.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물의 반입신고 관련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59조제2항제1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652호, 2019. 11. 26.>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 까지 생략

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6항 후단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 부터 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6699호, 2019. 12.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폐기물해양배출업으로 등록한 선박은 제외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700호, 2019. 12. 3.>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8조제1항제1호 중 “ 제11조, 제20조제1항, 제22조 ” 를 “ 제11조 ” 로 한다.

제56조제9호의2를 삭제한다.

제5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 해양수산부장관(제20조 및 제22조를 위반한 자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 ” 를 “ 해양수산부장관 ” 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16899호, 2020. 1.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02호, 2020. 1. 29.> (항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 까지 생략

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 ” 을 “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 ” 로 한다.

2* 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7007호, 2020. 2. 18.> (중앙행정기관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9008호,2022. 10. 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73호,2023. 7. 25.> (해상교통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후단 중 “ 「해사안전법」 제85조제1항 ”을 “ 「해상교통안전법」 제92조제1항 ”으로 하고, 제12조제1항제4호 단서 중 “ 「해사안전법」 제67조제5항 및 제71조 ”를 “ 「해상교통안전법」 제74조제5항 및 78조 ”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 「해사안전법」 제2조제14호 ”를 “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12호 ”로 한다.

⑩부터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0524호,2024. 10.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 중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은 2025년 1월 2일까지 “ 「어선안전조업법」 ”으로 본다.

부칙 <제21638호,2026. 5.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5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선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따라 예선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예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제2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예선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동안에는 예선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으나, 그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

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예선업을 영위할 수 없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 - 예선) 051 - 773 - 5772, 5771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 - 일반 사항) 051 - 773 - 5775, 5781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 - 위험물의 관리 등) 051 - 773 - 5783, 5791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 - 선박연료공급선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051 - 773 - 5774, 5773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입 신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출입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4. 28., 2020. 9. 8., 2023. 1. 17.>

1. 내항선(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안으로 입항하는 경우에는 입항 전에,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밖으로 출항하려는 경우에는 출항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항선 출입 신고서를 관리청에 제출할 것
2. 외항선(국내항과 외국항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안으로 입항하는 경우에는 입항 전에,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밖으로 출항하려는 경우에는 출항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항선 출입 신고서를 관리청에 제출할 것
3. 무역항을 출항한 선박이 피난, 수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항 후 12시간 이내에 출항한 무역항으로 귀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적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청에 제출할 것
4. 선박이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안으로 입항하거나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밖으로 출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적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청에 제출할 것

제3조(출입 허가의 대상 선박)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8. 9., 2017. 6. 30., 2019. 7. 9., 2020. 9. 8.>

1. 외국 국적의 선박으로서 무역항을 출항한 후 바로 다음 기항 예정지가 북한인 선박
2. 외국 국적의 선박으로서 북한에 기항한 후 1년 이내에 무역항에 최초로 입항하는 선박
- 2의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한 외국인 선원이 승무하였던 국제항해선박(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항해선박을 말한다)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
3.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

른 국가보안기관의 장(이하 “국가보안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

제4조(출입 허가의 신청)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항하거나 출항하기 전에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7. 9., 2020. 9. 8.>

1. 승무원 명부
2. 승객 명부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받은 서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남한과 북한 사이를 항행하는 선박만 해당한다)

제5조(출입 허가의 절차) ① 관리청이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출입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9. 7. 9., 2020. 9. 8.>

② 관리청은 제4조에 따라 출입 허가를 신청한 선박의 출입 허가 신청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선박에 승선하여 항행 관련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남한과 북한 사이를 항행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개정 2020. 9. 8.>

제6조(정박지의 지정)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관리청이 지정·고시하는 정박구역에 정박하려는 선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박지의 지정을 받아 정박해야 한다. <개정 2020. 9. 8.>

② 관리청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정박구역 안에 제1항에 따라 선박의 정박지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박구역 밖의 일정한 장소를 정박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9. 8.>

제6조의2(선박대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관리청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협의체(이하 “선박대피협의체”라 한다)를 무역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해운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해운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2. 해당 무역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 해당 무역항을 관할하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의 임직원(항만공사가 설립된 무역항인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관리청이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피항명령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선박대피협의체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기관·법인·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② 선박대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접안 또는 정박 금지구역의 설정
2. 선박 대피의 개시 및 완료 시점
3. 항만 운영의 중단 및 재개 시점
4. 그 밖에 선박 대피에 필요한 사항

③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선박대피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선박대피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관리청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있는 선박 및 항만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박대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청이 선박대피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 17.]

제7조(관계법인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관계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1. 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2. 제1호에 따른 법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3. 제1호에 따른 법인 및 그 특수관계인과 제2호에 따른 법인이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4. 임원의 임면,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 설정등기 등으로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② 특수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2.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및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4.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고용계약에 따른 피고용인 및 그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조의2(예선의 수급조절)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예선 수급계획(이하 “예선수급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예선운영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 제2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항만별·마력별 예선의 선령(船齡) 현황

2. 항만 내 예선의 대기장소 현황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재난의 발생, 항만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 수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예선의 수급 여건에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선수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예선운영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대한 제한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예선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예선운영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⑤ 관리청은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다른 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제한 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제한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0. 9. 8.>

⑥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제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존예선을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20. 9. 8.>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예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가 폐업하는 경우: 관리청이 실시하는 공모(公募) 절차를 거쳐 폐업으로 인하여 감소한 예선의 예방력(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예방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범위에서 예선을 선정하여 대체할 것

2. 예선업자가 기존의 자기소유예선[자기 명의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裸傭船) 또는 자기 소유로 약정된 리스예선을 포함한다]의 노후화 등으로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 대체되는 예선의 예방력이 기존예선의 예방력의 100분의 1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예선업의 변경등록을 허용할 것

[본조신설 2018. 5. 8.]

제7조의3(예선업자에 대한 서비스평가의 방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예선업자에 대하여 예선운영의 안전성 및 이용자의 만족도를 평가(이하 “서비스평가”라 한다)하는 경우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민간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평가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서비스평가는 예선의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현장 의견청취를 통하여 실시하되, 예선업무 수행 실적 등 객관적 통계지표를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5. 8.]

제7조의4(서비스평가에 따른 조치) ① 관리청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서비스평가 결과가 우수한 예선업자에 대하여 포상하고 제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공모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9. 8.>

② 관리청은 법 제25조의3제3항에 따라 서비스평가 결과가 부진한 예선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개정 2020. 9. 8.>

1. 예선의 증선을 위하여 신청한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예선업 변경등록의 거부
2. 제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공모 시 감점의 부여

[본조신설 2018. 5. 8.]

제7조의5(서비스평가 결과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비스평가의 결과를 관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1.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및 그 결과
2. 예선업자별 평가순위
3. 예선업자별 서비스 품질의 향상 정도

[본조신설 2018. 5. 8.]

제8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관리청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 9. 8.>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리청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개정 2020. 9. 8., 2023. 12. 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0. 9. 8.>

④ 삭제 <2021. 9. 24.>

제10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① 관리청은 제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해야 한다. <개정 2020. 9. 8.>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개정 2020. 9. 8.>

제11조(예선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예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중앙예선운영협의회와 무역항별로 설치하는 지방예선운영협의회로 구분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예선운영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1. 예선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명[선주(船主)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및 화주(貨主)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2. 예선업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예선업자를 대표하는 사람 3명
3. 예선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과 예선업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합의하여 추천하는 해운항만 전문가 3명. 이 경우 해운항만전문가 3명에는 도선사 단체에서 추천하는 도선사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예선운영협의회(이하 “지방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홀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청이 위촉한다.<개정 2020. 9. 8.>

1. 예선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과 예선업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합의하여 추천하는 해운항만 전문가 3명을 포함할 것. 이 경우 해운항만전문가 3명에는 해당 무역항에 소속된 도선사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예선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예선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같은 수가 되도록 구성할 것
- ④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⑤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⑥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의회의 기능) ①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개정 2018. 5. 8.>

1. 예선 사용료의 산정 및 결정
- 1의2. 예선의 수급조절
- 1의3. 서비스평가의 방법, 서비스평가 결과 우수 또는 부진한 예선업자의 기준
2. 중앙협의회 운영규정의 제정·개정
3. 지방협의회의 지도·감독 및 지원
4. 그 밖에 예선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지방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개정 2018. 4. 30., 2018. 5. 8.>

1. 예선의 사용방법
2. 지방협의회 운영규정의 제정·개정
3. 예선의 사용 절차
4. 예선사용기준의 설정
5.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소속 예선의 배치에 관한 사항(법 제24조제2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만 한정한다)

6. 그 밖에 해당 항만별 예선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협의회회의 회의) ① 협의회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위원의 선출방법,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①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이하 “자체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9. 8.>

1. 최고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환경보호 방침에 관한 사항
 2. 위험물 취급 안전관리 전담조직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
 3.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선임(選任) 및 임무에 관한 사항
 4. 위험물 하역시설(급유선을 포함한다)의 명칭, 규격, 수량 등의 명세에 관한 사항
 5.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6. 소방시설, 안전장비 및 오염방제장비 등 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7. 위험물 취급 작업기준 및 안전작업 요령에 관한 사항
 8. 부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사항
 9. 종합적인 비상대응훈련의 내용 및 실시 방법에 관한 사항
 10. 비상사태 발생 시 지휘체계 및 비상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11. 불안전 요소 발견 시 보고체계 및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위험물 취급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리청이 고시하는 사항
- ②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유효기간은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 ③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자체안전관리계획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8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말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흩어지기 쉬운 물건의 추락 방지 조치)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흩어지기 쉬운 물건을 하역하는 자는 덮개를 사용하거나 물건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수면에 떨어진 물건이 떠돌아다니거나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장애물의 제거 등) ① 관리청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이하 “장애물”이라 한다)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공매(公賣)로 처분한다. 다만, 그 물건의 가액(價額)이 공매비용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매 외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0. 9. 8.>

② 관리청이 제1항 본문에 따라 공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는 관리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필요하면 관보 또는 공보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8.>

1. 공매할 물건의 명칭 및 내용
2. 공매의 장소 및 일시
3. 입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

③ 관리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매로 취득한 금액 중에서 해당 물건의 제거와 공매 등에 든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공탁법」에 따라 공탁해야 한다. <개정 2020. 9. 8.>

④ 관리청이 법 제40조제6항 전단에 따라 장애물을 보관 및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애물을 원형 상태로 보관하고, 그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물의 보관 장소를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 9. 8.>

⑤ 관리청은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소유자등이 장애물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를 하고 공매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로 취득한 금액 중에서 해당 물건의 보관과 공매 등에 든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소유자등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공탁해야 한다. <개정 2020. 9. 8.>

제17조(공매대행의 의뢰 등) ① 관리청이 법 제40조제6항 후단에 따라 제거된 장애물의 처리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매대행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0. 9. 8., 2022. 2. 17.>

1. 장애물의 소유자등의 주소 또는 거소
2. 장애물의 종류·수량·품질 및 소재지
3. 장애물과 관련된 보험료 및 압류 현황
4. 그 밖에 장애물의 공매대행에 필요한 사항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처리 대행을 의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장애물의 소유자등과 그 장애물에 전세권·질권·저당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9. 8.>

③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장애물의 소유자등이 장애물의 제거 및 보관 등에 든 비용을 납부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관리청이 장애물 처리 대행의 중지를 요청했을 때에는 즉시 장애물의

처리 대행을 중지해야 한다.<개정 2020. 9. 8.>

④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장애물의 처리 대행을 의뢰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에 그 장애물에 대한 처리 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0. 9. 8.>

⑤ 제4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리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리 대행 의뢰를 해제해야 한다.<개정 2020. 9. 8.>

제18조(공사 등의 허가 범위)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또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항만법」,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나 면허를 받은 공사 또는 작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0. 7. 28., 2020. 9. 8.>

1. 사람이나 장비를 수중(水中)에 투입하는 공사 또는 작업
2.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외의 시설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하거나 변경·제거하는 공사 또는 작업
3. 그 밖에 무역항의 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사 또는 작업

제19조(선박경기 등 행사) 법 제42조제1항에서 “선박경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1. 요트, 모터보트 등을 이용한 선박경기
2. 해양폐기물 수거 등 해양환경 정화활동
3. 해상퍼레이드 등 축제 행사
4. 선박을 이용한 불꽃놀이 행사
5. 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사

제20조(무역항 단속공무원의 자격)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검사·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0. 9. 8.>

1. 7급 이상 공무원은 2년 이상, 8급 및 9급 공무원은 3년 이상 해양수산 관련 부서 또는 관리청(해양수산관서를 포함한다) 소속 순찰선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5급 항해사, 5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 이상의 해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 선박에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선박안전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에서 3년 이상 위험물검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20조의2(예선업자 등에 대한 개선명령) 법 제49조제2항에서 “다른 예선업자의 사업이나 다른 예선 사용자의 예선사용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예선업자의 사업이나 다른 예선 사용자의 예선사용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
2. 예선업자가 보유한 예선의 제공능력을 초과하여 예선을 제공하는 것으로 계약한 경우. 다만, 계약을 체결한 때에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 다른 예선업자와 예선 제공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예선 사용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

[본조신설 2018. 5. 8.]

제21조(중계망사업자의 업무) ① 법 제5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선박의 입항·출항 등 항만물류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처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보급과 이를 활용한 사업
2.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이하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및 항만운영정보시스템과 사용자의 전자문서를 중계하는 망(이하 “중계망”이라 한다)의 이용에 관한 교육자료의 제작 및 보급 등 교육사업
3.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의 이용촉진과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

②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과 사용자의 전자문서를 중계하는 망사업자(이하 “중계망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지도·감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0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중계망사업자의 사업수행 현황 보고 및 확인
2. 항만운영정보시스템 및 중계망의 장애 예방·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 보고 및 확인
3.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계망사업자 지정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4. 그 밖에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점검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 7. 26., 2018. 5. 8., 2020. 6. 2., 2020. 9. 8., 2023. 1. 17.>

1. 법 제4조에 따른 출입 신고의 수리 및 출입 허가
2. 법 제5조에 따른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의 지정·고시 및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선박의 이동 신고 수리
3.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의 선박의 정박 또는 정류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의 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박 장소 또는 방법의 변경 명령
4. 법 제7조에 따른 선박의 계선(繫船) 신고 수리, 계선 장소의 지정 및 안전 유지에 필요한 인원의 선원 승선 명령
5. 법 제8조에 따른 선박의 이동명령
- 5의2. 법 제8조의2에 따른 피항명령, 선박대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6. 법 제9조에 따른 선박교통의 제한 또는 금지
7.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항로의 지정·고시

8.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항로에서의 정박 또는 정류 신고의 수리
9.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항법 등의 고시
10.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선박의 항행 최고속력의 지정·고시
11. 법 제23조에 따른 예선사용 명령 및 예선사용기준 고시
12. 법 제24조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
13. 법 제26조에 따른 예선업 등록의 취소 및 사업정지 명령
14. 법 제2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15. 법 제32조에 따른 위험물 반입 신고의 수리, 들어올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 및 수량의 제한 또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16. 법 제33조에 따른 위험물운송선박의 정박·정류 장소 지정
17. 법 제34조에 따른 위험물 하역 시의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 및 변경 명령, 하역의 금지 또는 중지 명령 및 하역 장소의 지정
18.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위험물 취급 시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안전조치 명령
19. 법 제37조에 따른 선박수리의 허가 및 신고 수리, 수리하려는 선박에 대한 정박 또는 계류 장소의 지정 및 수리 중인 선박에 대한 안전조치 명령
20.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등의 제거 명령
21. 법 제39조제2항·제3항에 따른 해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의 조치 및 조치에 들어간 비용 징수
22. 법 제40조에 따른 장애물의 제거 명령, 장애물의 제거 등의 조치 및 비용 징수, 장애물의 보관 및 처리
23. 법 제41조에 따른 공사 등의 허가 및 안전조치 명령
24. 법 제42조에 따른 선박경기 등의 행사 허가 및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허가 사실 통보
25. 법 제43조에 따른 부유물에 대한 행위의 허가 및 안전조치 명령
26. 법 제44조에 따른 어로(漁撈) 금지 장소 및 항로의 지정
27.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등화의 제한 명령
28. 법 제47조에 따른 출항의 중지 명령
29.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검사·확인 등
30. 법 제49조에 따른 개선명령
31. 법 제52조제1호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의 청문
32. 법 제5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33.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협의회 위원회의 위촉
34. 제1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위험물 취급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고시

② 삭제<2020. 6. 2.>

③ 관리청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항만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항만공사 관할 무역항에 대하여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입 신고의 수리 업무를 항만공사에 위탁한다.<개정 2018. 5. 8., 2019. 7. 9., 2020. 9. 8.>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26473호, 2015. 8.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개항질서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만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다.

제4조(자체안전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개항질서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체안전관리계획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유효기간은 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5조(장애물의 제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견된 장애물의 제거 및 공매 등에 관하여는 제16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개항질서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

제6조(개항단속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개항질서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임명된 개항단속공무원은 제20조에 따라 임명된 무역항 단속공무원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2항 중 “「개항질서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55조의2제1호 중 “「개항질서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항

③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④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항

⑤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개항질서법」 제6조”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개항질서법」 제11조”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⑥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부터 제3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1조제1항제19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1조제2항제1호 중 “ 제6호부터 제22호까지 ” 를 “ 제6호부터 제18호까지 ” 로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⑦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무역항 단속공무원으로 임명된 자

⑧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8항 중 “ 「개항질서법」 제48조제1항제4호 ” 를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제6호부터 제13호까지, 제20호 및 제21호 ” 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개항질서법 시행령」, 「항만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개항질서법 시행령」, 「항만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442호,2016. 8. 9.>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72호,2017. 6.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11호,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5>까지 생략

<31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4호 중 “ 국민안전처장관 ” 을 “ 해양경찰청장 ” 으로 한다.

<31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846호,2018. 4. 30.>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5호 중 “ 해양환경관리공단 ” 을 “ 해양환경공단 ” 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28877호,2018. 5.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68호,2019. 7. 9.>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48호,2020. 4.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52호,2020. 6. 2.>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2호 중 “ 징수(같은 조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를 “ 징수 ”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2 제2호거목 및 너목을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제30877호,2020. 7. 28.>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 「항만법」 이나 ” 를 “ 「항만법」, 「항만 재개발 및 주변 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또는 ” 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0993호,2020. 9. 8.>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14호,2021. 9. 24.>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을 삭제한다.

1& 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32449호,2022. 2. 17.>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3& 까지 생략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 을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 으로 한다.

3(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3238호,2023. 1.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다.

부칙 <제33434호,2023. 4. 25.>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3913호,2023. 12. 12.>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4. 25.>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징금 | | |
|----------------------|-----------|-------|-------|----------|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가.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 | 법 제27조제1항 | 500 | 750 | 1,000 |

| | | | | |
|-------------------------------------|-----------|-----|-----|-------|
| 당한 사유 없이 예선의 사용 요청을 거절한 경우 | | | | |
| 나.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예항력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제1항 | 500 | 750 | 1,000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 6.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위반행위자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 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 | |
|--|--------------|-------|-------|----------|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가.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우선피항선을 정박하거나 정류한 경우 | 법 제59조제2항제1호 | 60 | 80 | 100 |
| 나.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2항제2호 | 60 | 80 | 100 |
| 다.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정박선박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2항제3호 | 60 | 80 | 100 |
| 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2항제4호 | 100 | | |
| 마.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정장소에 계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2항제5호 | 100 | | |
| 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신고 및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1항제1호 | 150 | | |

| | | | | |
|---|-----------------|-----|-----|-----|
| 사.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항법 등에 관한 고시를 위반하여 항행한 경우 | 법 제59조제2항제6호 | 70 | 100 | 150 |
| 아. 법 제13조에 따른 항법을 위반하여 항행한 경우 | 법 제59조제2항제7호 | 70 | 100 | 150 |
| 자. 법 제14조에 따른 항법을 위반하여 항행한 경우 | 법 제59조제2항제8호 | 90 | 120 | 180 |
| 차.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인선을 항행한 경우 | 법 제59조제2항제9호 | 70 | 100 | 150 |
| 카.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범선을 항행한 경우 | 법 제59조제2항제10호 | 70 | 100 | 150 |
| 타.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한 경우 | 법 제59조제2항제11호 | 70 | 100 | 150 |
| 파.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속력 제한을 위반하여 항행한 경우 | 법 제59조제2항제12호 | 70 | 100 | 150 |
| 하.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다른 선박과의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선박을 항행한 경우 | 법 제59조제2항제13호 | 70 | 100 | 150 |
| 거. 삭제 <2020. 6. 2.> | | | | |
| 너. 삭제 <2020. 6. 2.> | | | | |
| 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예선업의 변경등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 | 법 제59조제1항제3호 | 150 | 200 | 250 |
| 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예선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예선업을 한 경우 | 법 제59조제1항제4호 | 150 | 200 | 250 |
| 머.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반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32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험물을 통지받지 못하거나 거짓으로 통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59조제2항제15호 | 100 | 150 | 200 |
| 버. 법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을 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 법 제59조제2항제15호의2 | 100 | 150 | 200 |
| 서.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1항제5호 | 150 | 200 | 250 |
| 어.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수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2항제16호 | 100 | | |
| 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표지의 설치 | 법 제59조제2항제17호 | 150 | | |

| | | | | |
|---|---------------|-----|-----|-----|
|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처.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장애물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2항제18호 | 150 | | |
| 커.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강력한 불빛을 사용한 경우 | 법 제59조제2항제19호 | 60 | 80 | 100 |
| 터.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적이 나 사이렌을 울린 경우 | 법 제59조제2항제20호 | 60 | 80 | 100 |
| 퍼. 법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재경보를 울리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2항제21호 | 60 | 80 | 100 |
| 허.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출석·진술이나 서류제출·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서류제출·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 법 제59조제2항제22호 | 100 | 150 | 200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11. 13.] [해양수산부령 제703호, 2024. 11. 13.,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 - 일반 사항) 051 - 773 - 5775, 5781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 - 예선) 051 - 773 - 5772, 5771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 - 위험물의 관리 등) 051 - 773 - 5783, 5791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 - 선박연료공급선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051 - 773 - 5774, 577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험물의 범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산적액체위험물(이하 “산적액체위험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선박 출입 신고서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내항선의 선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내항선 출입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물선의 선장은 출입신고서에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승객 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4.>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려는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외항선의 선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외항선 출입신고서에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승객 명부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승무원 명부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또는 항만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7.>

1. 삭제 <2020. 5. 7.>

2. 삭제 <2020. 5. 7.>

③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입항하는 선박의 선장은 해당 선박의 출항 일시가 이미 정해진 경우에는 입항과 출항의 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출입신고서를 제출한 선박의 선장은 해당 선박의 출입 일시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또는 항만공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의 면제)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17. 7. 28.>

1. 관공선, 군함, 해양경찰함정 등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선박
2. 도선선(導船船), 예선(曳船) 등 선박의 출입을 지원하는 선박
3.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수역을 항행하는 정기여객선(「해운법」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을 말한다)으로서 경유항(經由港)에 출입하는 선박
4. 피난을 위하여 긴급히 출항하여야 하는 선박
5. 그 밖에 항만운영을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나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입신고를 면제한 선박

제5조(출입 허가의 신청)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선박의 선장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기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입 허가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6.>

제6조(정박지의 지정 신청)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박지의 지정 신청서는 「항만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0. 7. 30.>

② 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2. 선박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선박을 조종할 수 없는 경우
3. 인명을 구조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4. 해양오염 등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5. 그 밖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선박계선의 신고)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선박을 계선(繫船)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선박계선 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박의 계선 신고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선박계선 신고서의 확인란에 날인하여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항로 준수의 예외)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예인선의 항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예인선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다른 선박을 끌고 항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 예인선의 선수(船首)로부터 피(被)예인선의 선미(船尾)까지의 길이는 2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른 선박의 출입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인선은 한꺼번에 3척 이상의 피예인선을 끌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무역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항법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예선업의 등록 신청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예선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6.>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예선의 척수(隻數), 제원(諸元) 현황 및 소화장비 등의 시설현황
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船級法人)(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예항력(曳航力) 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예선업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예선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1.>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및 사업개시 예정일
2. 사업에 필요한 예선업 종사원 현황
3. 예선 현황
4. 그 밖에 예선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⑤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역항별 예선보유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⑥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예선추진기형은 전(全)방향 회전속도가 60초 이내이어야 한다.

⑦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서 “소화설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 시설을 말한다.

⑧ 법 제24조제2항제4호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30년 이하일 것을 말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 및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예항력검사에 합격한 예선의 경우에는 선령의 기준 연한(年限)을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7. 4.>

⑨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선업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예선업 등록기준에 적합하고, 법 제25조에 따른 예선업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예선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4.>

⑩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9항에 따라 예선업 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예선업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4.>

1. 사업을 영위하는 무역항명
2. 상호 및 주소
3.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4. 예선의 척수 및 선박별 제원

제10조의2(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의 이용)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을 이용하려는 무역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이용기간과 사유 등에 대하여 다른 무역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및 미리 협의한 후, 그 협의 결과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예선의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을 이용하려는 무역항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것

가. 무역항에 출입하는 선박이 일시적으로 급증하여 해당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으로는 제때 예선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나. 예선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 등 예선업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예선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다. 무역항의 운영상 사정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예선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을 이용함으로써 다른 무역항의 예선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을 이용하게 하려는 경우 이를 제1항에 따른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의 이용을 신청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및 다른 무역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등록된 무역항이 아닌 다른 무역항에서 예선업무를 수행하려는 예선업자는 해당 무역항에 입항하기 전에 그 사실을 해당 무역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의 이용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9. 21.]

제10조의3(예선의 대기장소 부족으로 인한 예선업 등록 거부) ① 법 제25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항만 내 예선의 대기장소에 예선을 겹쳐서 접안(接岸)할 경우 3겹 이내로 겹쳐서 접안할 수 있을 것을 말한다. 다만, 항만 운영의 여건상 필요한 경우로서 예

선의 대기장소에 설치된 계선주(繫船柱) 등 항만시설의 설계 기준 및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겹 이내로 겹쳐서 접안할 수 있도록 예선의 대기장소에 관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예선의 대기장소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7. 4.]

제10조의4(예선서비스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5조의3제6항에 따른 예선서비스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의 항만운영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항만운영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항만운영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4급 이상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3. 예선 사용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예선업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 7. 4.]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통보)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과징금 납부통지 서식 등) ① 영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납부통지서·영수통지서·납부영수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예선의 예방력검사)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예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예방력검사의 유효기간 내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실시하는 정기 예방력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7. 16.>

1. 검사 당시 예선의 선령이 25년 미만인 경우: 5년

2. 검사 당시 예선의 선령이 25년 이상인 경우: 3년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선사(船社), 도선사(導船士) 등 예선 사용자의 요청으로 예방력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예선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수시 예방력검사를 명할 수 있다.

③ 예선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정기 예방력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제2항에 따른 수시 예방력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 명령일부터 15일 이내에 예방력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정기 예방력검사의 유효기간은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예방력 증명서의 검사일부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유효기간을 계산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수시 예방력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시 예방력검사를 받은 날부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유효기간을 계산한다.

제13조의2(예선의 공동 배정) ① 예선업자는 법 제2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예선을 공동 배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규약을 작성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선운영협의회(이하 “지방협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 배정에 참여하는 예선업자 및 이를 대표하는 예선업자
2. 공동 배정의 방법
3. 예선 사용의 조건
4. 공동 배정의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항만의 전체 예방력의 100분의 50을 넘는 예선을 공동 배정하려는 예선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규약에 대하여 미리 지방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규약과 함께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동 배정에 관한 규약을 제출한 예선업자는 예선 사용자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자매체에 해당 규약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예선업자가 예선의 공동 배정을 조기에 종료하거나 공동 배정에 참여하는 예선업자를 변경하는 등 제3항에 따라 공표한 규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 7. 4.]

제14조(위험물 반입의 신고)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들여오려는 자는 반입 24시간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험물을 육상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무역항의 육상구역으로 위험물을 들여오기 전까지, 전(前) 출항지부터 반입항까지의 운항 시간이 24시간 이내이고 해상으로 위험물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위험물을 들여오기 전까지 위험물 반입 신고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8.>

1. 별지 제10호서식의 위험물 반입신고서

2. 별지 제11호서식의 위험물 일람표

3.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화물적부도[위험물 등 운송물의 선박 내 배치에 관한 도면을 말하며,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2호·제13호에 따른 탱커 및 탱크선 중 화물창(貨物艙)이 두 개 이상인 선박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위험물 반입신고서의 확인란에 날인하여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위험물 반입의 제한)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에 대해서는 그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6.>

1.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조제1호가목·나목·다목에 따른 화약류

2.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조제6호나목에 따른 독물류

3.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사성 물질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반입된 위험물에 대하여 해당 위험물의 격리, 이동 또는 반출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의2(위험물의 통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위험물의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본조신설 2019. 7. 16.]

제16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신청 및 승인 절차 등) ①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이하 “자체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변경승인 및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변경승인·갱신 신청서에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초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위험물 하역 전

2.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변경승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3.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영 제14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또는 갱신 여부를 검토하고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위험물 하역의 제한 등)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의 하역을 금지 또는 중지하게 하거나 무역항의 수상구역등 외의 장소를 지정하여 하역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통보할 수 있다.

② 법 제34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총톤수 1천톤 이상의 위험물 운송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시설 및 위험물 하역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산적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18조(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① 위험물취급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법 제35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위험물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자(이하 “위험물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자격 및 보유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위험물취급자가 제1항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안전관리자 선임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위험물취급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9조(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① 위험물취급자가 법 제3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안전관리 전문업체(이하 “안전관리 전문업체”라 한다)로 하여금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안전관리 전문업체는 원래의 위험물취급자를 기준으로 별표 3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보유기준에 적합하게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확보하여야 하고, 위험물 안전관리자마다 위험물취급자를 지정하여 해당 위험물취급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게 하여야 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 운송선박”이란 총톤수 1천톤 이상의 산적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승인한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현장 비치
2. 안전점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작성 및 현장 비치
3.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9조의2(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8. 7. 4.]

제19조의3(위험물 하역 관련 안전장비) ① 법 제35조제6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산적액체위험물을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6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장비”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1. 접안하는 선박의 속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선박접안속도계
2. 돌핀 계류시설에 외부 충격이 있을 경우 즉시 작동할 수 있는 자동경보시스템
3. 원격으로 위험물의 차폐(遮蔽)가 가능한 자동차단밸브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접안속도계 및 자동경보시스템은 각 선석(선박을 매어두는 위치)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단밸브는 육상구역의 관로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개정 2021. 6. 30.>

[본조신설 2018. 7. 4.]

제19조의4(위험물 관련 자료제출) ① 관리청이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물의 적재(積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선박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 가. 선박명 또는 선박번호 등 해당 선박의 식별을 위한 정보
 - 나. 해당 선박의 국내 입항일과 입항 항만 등 운항 정보
2. 제1호에 해당하는 선박에 적재된 위험물의 선하증권(船荷證券) 번호 및 품목번호 등 위험물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3. 그 밖에 관리청이 선박에 적재된 위험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 19.]

제20조(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7. 4.>

1. 강의실 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교육생 1명당 1.2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시설물을 확보할 것. 이 경우 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해당 시설물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강사를 확보할 것
 - 가. 위험물 안전관리자로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나. 교육기관에서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강의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②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기관의 시설물 사용권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세 또는 임대의 경우 계약서 사본 등)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증명서류(재직증명서 사본 등) 1부
3. 연간 교육일정, 교육장소, 강사진, 교육교재 등을 포함한 교육계획서

③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⑤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의 명칭, 교육기관의 장 또는 교육기관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삭제 <2018. 7. 4.>
- ⑦ 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4에 따른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4.>
- ⑧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교육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장소 및 교육 예상인원 대비 교육 참석인원
 2. 교육과목, 교육시간 및 강사

제21조(선박수리 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선박수리 허가를 받으려는 선장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선박수리를 신고하려는 선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선박수리 허가신청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작업계획서(취급장비 명세를 포함한다)
 2. 해당 작업에 필요한 작업자의 자격증 사본 1부(수리 대상 선박의 선원이 작업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선박수리를 허가하거나 선박수리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선박수리 허가신청서, 신고서의 확인란에 날인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③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내 위험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내 구역을 말한다.
1. 윤활유탱크
 2. 코퍼댐(coffer dam)
 3. 공소(空所)
 4. 축전지실
 5. 페인트 창고
 6. 가연성 액체를 보관하는 창고
 7. 폐위(閉圍)된 차량구역
- ④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명할 수 있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16.>
1. 안전시설 및 인원의 보강
 2. 작업시간의 조정

3. 수리장소의 일시적 변경

4. 그 밖에 선박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위험 예방조치의 요청 등)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조난선(遭難船)의 선장이 「항로 표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이하 “항로표지”라 한다)의 설치나 그 밖에 다른 선박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위험 예방조치 요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조난선 선장의 구두 요청을 받아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위험 예방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위험 예방조치 비용의 산정을 위한 관계 서류의 보관을 해당 조난선의 선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위험 예방조치 비용의 산정 및 납부)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위험 예방조치 비용의 산정방법은 「항로표지법」 제14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18. 5. 1.>

②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위험 예방조치 비용을 항로표지의 설치 등 위험 예방조치가 종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40조제7항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에 관해서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1조의5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25조(공사 등의 허가 신청)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공사 또는 작업을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공사·작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작업계획서(취급장비 명세를 포함한다)
2. 해당 작업에 필요한 작업자의 자격증 사본 1부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사 또는 작업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공사·작업 허가신청서의 확인란에 날인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6조(공사 등의 허가 범위) 영 제18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사 또는 작업”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해양시설에 대하여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는 공사 또는 작업을 말한다.

제27조(행사의 허가 신청)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선박경기 등의 행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행사 허가신청서에 행사계획서(위치도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행사를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행사 허가신청서의 확인란에 날인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부유 등의 허가 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목재 등 선박 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되는 부유물(이하 “부유물”이라 한다)을 수상(水上)에 띄워 놓거나 운반 등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부유 등 허가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부유물의 부유 또는 운반 등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부유 등 허가신청서의 확인란에 날인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9조(화재 시 경보방법) ①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화재를 알리는 경보는 기적(汽笛)이나 사이렌을 장음(4초에서 6초까지의 시간 동안 계속되는 울림을 말한다)으로 5회 울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보는 적당한 간격을 두고 반복하여야 한다.

제30조(출항 중지 통지서의 발급)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7조에 따라 선박의 출항을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선박 출항 중지 통지서를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선박의 출항 중지를 통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선박 출항 중지 통지서를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1조(증표)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선박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확인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32조(그 밖의 개선명령) 법 제49조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 또는 승무원 및 승객에 대한 일시적인 출입제한
2. 작업 또는 행사의 일시적인 제한
3. 공사 또는 수리계획의 변경

제33조(중계망사업자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중계망사업자(이하 “중계망사업자”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납입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3.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항만운영정보시스템과 사용자의 전자문서를 중계하는 망사업(이하 “중계망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설비를 갖추거나 해당 설비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을 가질 것
 - 가. 중계망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속도 및 용량을 갖춘 전산설비
 - 나. 전자문서를 변환·처리·전송 및 보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다. 전자문서를 전달하려는 자의 전산처리설비부터 해양수산부의 전산처리설비까지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통신설비 및 통신망

라. 전자문서의 변환·처리·전송·보관 및 데이터베이스의 안전한 운영과 보안을 위한 전산설비 및 소프트웨어

마. 전자문서 중계업무의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한 원격지 재해복구시스템

4. 중계망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가. 중계망사업을 위한 표준전자문서의 개발 또는 전자문서 중계방식과 관련한 기술 분야에서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10명 이상

나. 전자문서와 데이터베이스의 보안 관리를 위한 전문요원 3명 이상

② 제1항제3호 각 목 및 제4호 각 목의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중계망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중계망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정관

2. 자본금·주주 현황 등 사업자의 일반 현황을 기재한 서류

3. 제1항제3호에 따른 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항제4호에 따른 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의 신원증명서

6. 사업계획서

7. 전자문서 중계망 운영에 관한 업무설명서

④ 제3항에 따른 중계망사업자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인 임원의 경우로서 신원증명서에 갈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중계망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중계망사업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지정사실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수수료) ① 법 제51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현금,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35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 신청 등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 2. 24.]

부칙 <제155호, 2015. 8. 4.>**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개항질서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출입 허가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조는 이 규칙 시행 후 3일이 경과한 날 이후에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제4조**(예선의 예방력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항만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예방력검사를 받은 예선은 이 규칙 제13조에 따른 예방력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제5조**(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및 별표 1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이 규칙 제18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본다.**제6조**(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산적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안전관리자 양성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국토해양부령 제380호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산적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안전관리자 양성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기관을 포함한다)은 이 규칙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라 이 규칙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기관에서 종전의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이 규칙 제20조 및 별표 4에 따라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위험 예방조치 비용의 산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한 위험 예방조치에 대한 비용산정방법은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다.**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박안전 조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항질서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개항질서법」 제5조에 따른 출입신고”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입 신고”로 한다.

③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개항질서법」 제5조에 따른 입항신고”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입 신고”로 한다.

④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34조제1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⑤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호 중 “「개항질서법」 제5조”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⑥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항만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항만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항만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1호, 2017. 7. 28.>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호, 2017. 9. 21.>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호, 2017. 10. 10.>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호, 2018. 5. 1.>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항로표지법」 제2조제1항제1호”를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항로표지법」 제10조제3항”을 “「항로표지법」 제14조제5항”으로 한다.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94호, 2018. 7.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19조의3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4에 따라 양성과정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성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4에 따라 재교육과정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별표 4 제1호나목의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종전의 별표 4에 따라 양성과정 또는 재교육과정의 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산적액체위험물(선박연료공급선의 산적액체위험물은 제외한다)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별표 4 제1호나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무교육

2. 선박연료공급선의 산적액체위험물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별표 4 제1호나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무교육

④ 이 규칙 시행 당시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고용된 사람으로서 종전의 별표 4에 따른 양성과정 또는 재교육과정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산적액체위험물(선박연료공급선의 산적액체위험물은 제외한다)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별표 4 제1호나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무교육

2. 선박연료공급선의 산적액체위험물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별표 4 제1호나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무교육

3. 포장된 위험물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

부칙 <제325호, 2019. 2.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호,2019. 7. 16.>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8호,2020. 5.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0호,2020. 7. 30.> (항만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 「항만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을 “ 「항만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으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439호,2020. 9. 28.>

이 규칙은 2020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6호,2021. 6. 3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9호,2022. 1. 20.>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6호,2022. 2. 24.>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0호,2023. 1. 19.>

이 규칙은 2023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2호,2023. 11.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3호,2024. 11. 13.>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7. 9. 21.>

무역항별 예선보유기준(제10조제5항 관련)

| 무역항 | 예선보유기준 |
|--|---|
| 1. 인천항(경인항을 포함한다)
2. 평택·당진항
3. 대산항(태안항을 포함한다)
4. 군산항(장항항을 포함한다)
5. 여수항(광양항을 포함한다)
6. 마산항(삼천포항, 통영항, 진해항, 고현항, 장승포항, 옥포항 및 하동항을 포함한다)
7. 부산항
8. 울산항
9. 포항항
10. 보령항 | 예항력은 합계 기준 2천마력 이상, 척수는 1척 이상일 것(1천마력 이상 1척을 포함한다). 다만, 사업구역을 경인항에 한정하는 경우 예항력은 합계 기준 1천마력 이상으로 한다. |
| 1. 목포항(완도항을 포함한다)
2. 동해·묵호항
3. 제주항(서귀포항을 포함한다)
4. 속초항(삼척항, 옥계항 및 호산항을 포함한다) | 예항력은 합계 기준 1천마력 이상, 척수는 1척 이상일 것(1천마력 이상 1척을 포함한다)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8. 7. 4.>

소화설비 등 시설기준(제10조제7항 관련)

| 예선의 마력 | | 2천마력 미만 | 2천마력 이상
3천마력 미만 | 3천마력 이상 |
|--------------------------|-----------------------|---------|--------------------|---------|
| 소화설비 등 | 능력(m ³ /h) | 100 | 110 | 120 |
| | Head(m) | 60 ~ 80 | 60 ~ 80 | 60 ~ 80 |
| 소화총 | 엔진마력 | 45 | 50 | 55 |
| | 기(수) | 2 | 2 | 2 |
| 화학소화재탱크(m ³) | | 3 ~ 7 | 3 ~ 7 | 3 ~ 7 |

* 비고

1. 예선업자별로 보유한 예선의 2분의 1이상의 예선에 위 표에 따른 소화 설비 등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및 이와 유사한 가연성 물질을 적재한 선박에 대한 예선업무를 수행하는 예선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위 표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질의 화재 소화에 적합한 소화 설비 등 시설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3. 11. 21.>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보유기준(제18조제1항 관련)

| 구 분 |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 위험물취급자별 안전관리자 보유기준 |
|-------------------|--|--|
| 산 적
액 체
위험물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 4.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이하 이 표에서 “전문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 또는 화공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화학 또는 화공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3년 이상 산적액체위험물을 취급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항해사·기관사 또는 운항사로 총톤수 3천톤 이상의 위험물 산적운반선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승선한 사람.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3급 해기사 면허 소지자: 3년 이상 나. 2급 해기사 면허 소지자: 2년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적액체위험물을 연간 2천만톤 이상 취급하는 사업자: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제6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4명 이상을 포함하여 6명 이상. 다만, 산적액체위험물 중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2. 산적액체위험물을 연간 1천만톤 이상 2천만톤 미만 취급하는 사업자: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제6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하여 4명 이상. 다만, 산적액체위험물 중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3. 산적액체위험물을 연간 50만톤 이상 1천만톤 미만 취급하는 사업자: 2명 이상. 다만, 산적액체위험물 중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4. 산적액체위험물을 연간 50만톤 미만 취급하는 사업자: 1명 이상. 다만, 산적액체위험물 중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

| | | |
|---------|---|---|
| | <p>이상</p> <p>다. 1급 해기사 면허 소지자: 1년 이상</p> <p>7. 산적액체위험물을 취급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른 산적액체위험물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p> | <p>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p> |
| 포장된 위험물 | <p>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p> <p>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p> <p>3.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p> <p>4.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 또는 화공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3년 이상 위험물을 취급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화학 또는 화공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6년 이상 위험물을 취급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6. 3급 이상의 해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총톤수 3천톤 이상의 선박(어선은 제외한다)에서 항해</p> | <p>1. 포장된 위험물을 연간 10만톤 이상 취급하는 사업자: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1명 이상을 포함하여 2명 이상</p> <p>2. 포장된 위험물을 연간 3천톤 이상 10만톤 미만 취급하는 사업자: 1명 이상</p> <p>3. 포장된 위험물을 연간 3천톤 미만 취급하는 사업자: 1명 이상. 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기능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p> <p>4.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자 외에 해당 분야의 자격을 가진 위험물 안전관리자 1명 이상. 다만, 해당 위험물을 상시 취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화주가 선임한 안전관리 업무담당자를 배치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p> |

| | | |
|--|----------------------------|--|
| | 사·기관사 또는 운항사로 3년 이상 승선한 사람 | |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4. 11. 13.>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제19조의2 관련)

1. 산적액체위험물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

가. 양성교육

- 1) 교육대상: 제18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라 산적액체위험물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려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함.

2) 교육과정

| 구분 | | 세부 교육내용 | 교육시간
(단위: 시간) |
|-------------|------------------|---|------------------|
| 1) 교육
과목 | 가) 위험물 개요 | (1) 위험물의 특성
(2) 해양오염물질(해양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해양오염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특성 | 6 |
| | 나) 관련 법규 | (1) 국제법규
(가) 위험물 운송 관련 국제해사기구(IMO) 협약 및 규칙
(나) 해양오염물질 운송 관련 국제해사기구 협약 및 규칙
(다) 그 밖의 위험물 운송 사고 및 책임한계 등에 관한 협약
(2) 국내 법규
(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선박안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취급에 관한 사항
(나) 산적액체위험물의 하역 관련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4 |
| | 다)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 (1) 산적액체위험물에 관한 일반 사항
(2)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에 관한 일반 사항
(3) 해상·육상하역설비 및 취급방법
(4) 선박에서 육상으로 하역 시 안전점검 방법
(5) 위험물 하역 관련 안전관리
(6)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비상조치법 및 의료응급처치 방법을 포함한다)
(7) 위험물 관련 안전사고 사례 | 22 |

| | | | |
|-------|---------|-------------------------|----|
| | 라) 현장실습 | 산적액체위험물 하역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실습 | 4 |
| | 마) 안전일반 | 위험물 안전관리의 중요성 | 3 |
| 2) 평가 | | 교육과목 전반에 대한 평가 | 1 |
| 3) 총계 | | | 40 |

* 비교: 평가 결과 합격 기준은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으로 한다.

나. 실무교육

- 1) 산적액체위험물(선박연료공급선의 산적액체위험물은 제외한다)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

가) 교육시기

- (1) 가목에 따른 양성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우: 양성교육을 받은 후 매 3년마다 실무교육을 실시함.
- (2) 가목에 따른 양성교육을 받지 않고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고용된 사람의 경우: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고용된 후 그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최초의 실무교육을 실시하며, 그 후 매 3년마다 실무교육을 실시함.
-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인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1) 및 (2)에 따른 교육시기에 실무교육[(2)에 따른 최초의 실무교육은 제외한다]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실무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물취급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교육과정

| 구분 | | 세부 교육내용 | 교육시간
(단위: 시간) |
|-------------|-----------|---|------------------|
| 1) 교육
과목 | 가) 위험물 개요 | (1) 위험물의 특성
(2) 해양오염물질의 특성 | 3 |
| | 나) 관련 법규 | (1) 국제법규
(가) 위험물 운송 관련 국제해사기구 협약 및 규칙
(나) 해양오염물질 운송 관련 국제해사기구 협약 및 규칙 | 4 |

| | | |
|------------------|--|----|
| | (다) 그 밖의 위험물 운송 사고 및 책임한계 등에 관한 협약
(2) 국내 법규
(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선박안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취급에 관한 사항
(나) 산적액체위험물의 하역 관련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
| 다)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 (1) 산적액체위험물에 관한 일반 사항
(2)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에 관한 일반 사항
(3) 해상·육상하역설비 및 취급방법
(4) 선박에서 육상으로 하역 시 안전점검 방법
(5) 위험물 하역 관련 안전관리
(6)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비상조치법 및 의료응급처치 방법을 포함한다)
(7) 위험물 관련 안전사고 사례 | 6 |
| 라) 안전일반 | 위험물 안전관리의 중요성 | 3 |
| 2) 총계 | | 16 |

2) 선박연료공급선의 산적액체위험물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

가) 교육시기

- (1) 가목에 따른 양성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우: 양성교육을 받은 후 매 3년마다 실무교육을 실시함.
- (2) 가목에 따른 양성교육을 받지 않고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고용된 사람의 경우: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고용된 후 그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최초의 실무교육을 실시하며, 그 후 매 3년마다 실무교육을 실시함.
-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인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1) 및 (2)에 따른 교육시기에 실무교육[(2)에 따른 최초의 실무교육은 제외한다]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실무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물취급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

는 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교육과정

| 구분 | | 세부 교육내용 | 교육시간
(단위: 시간) |
|-------------|----------------------|--|------------------|
| 1) 교육
과목 | 가) 위험물 개요 | 위험물의 특성 | 1 |
| | 나) 관련 법규 |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선박안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취급에 관한 사항
(2) 선박연료공급 작업 관련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2 |
| | 다) 선박 연료공급 작업 시 안전관리 | (1) 선박연료공급 시 선박과 선박연료공급선 간의 안전 점검 방법
(2) 안전 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비상조치법 및 의료응급처치 방법을 포함한다)
(3) 위험물 관련 안전사고 사례 | 3 |
| | 라) 안전일반 | 위험물 안전관리의 중요성 | 2 |
| 2) 총계 | | | 8 |

2. 포장된 위험물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

가. 교육시기: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고용된 후 그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최초의 교육을 실시하며, 그 후 매 3년마다 실시함. 다만, 교육대상자인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본문에 따른 교육시기에 교육(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실시하는 최초의 교육은 제외한다)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물취급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3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나. 교육과정

| 구분 | | 세부 교육내용 | 교육시간
(단위: 시간) |
|-------------|-----------|--|------------------|
| 1) 교육
과목 | 가) 위험물 개요 | (1) 위험물의 특성
(2) 포장된 위험물의 목록 및 분류 기준 | 3 |

| | | | |
|-------|------------------------|---|----|
| | 나) 관련 법규 | (1) 국제법규
(가) 위험물 운송 관련 국제해사기구 협약 및 규칙
(나)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의 안전한 운송과
취급에 관한 국제해사기구의 권고
(다) 그 밖의 포장된 위험물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협약
(2) 국내 법규
(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선박
안전법」 및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나) 포장된 위험물의 하역 관련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3 |
| | 다)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 (1) 포장된 위험물 일반사항(용기·포장 요건, 표시·표
찰 및 증명서류 등)
(2) 포장된 위험물의 특성별 안전관리 방안 및 대응 방법
(3) 항만 내 하역설비 및 안전취급방법
(4) 선박에서 육상으로 하역 시 안전점검 방법
(5) 포장된 위험물의 하역·보관 시 관련 안전조치
(6)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비상조치법 및 의료응급처치
방법을 포함한다)
(7) 위험물 관련 안전사고 사례 | 8 |
| | 라) 안전일반 | 위험물 안전관리의 중요성 | 2 |
| 2) 총계 | | | 16 |

비고 : 제1호 및 제2호의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수수료(제34조제1항 관련)

| 구분 | 금액(건당) |
|---------------------------|--------|
|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 | 5천원 |
| 2.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사 동의 허가 | 1천원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5. 7.> 항만운영정보시스템(www.port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항선 출입 신고서

[]신고 Declaration []허가 Permission / []입항 Arrival []출항 Departure

[]최초 Notice []변경 Change []최종 Final []취소 Cancel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제출번호(적하목록 No.: MRN)

| | |
|---|---|
| 1. 선박 제원 name and description of ship
- 선박명 Name of Ship:
- 선박국적 Nationality of Ship:
- 호출부호 Call sign:
- 선박번호 Official No.:
- IMO번호 IMO No.:
- 국제충톤수 International Gross Tonnage:
- 선박 종류 Kind of Ship: | 2. 입항/출항 일시(Date-time of arrival/departure)
년(yyyy) 월(mm) 일(dd) 시(hh) 분(mm) |
| | 3. 최초출항지/ 최종목적지
Port of Provenance / Final Port of Destination |
| | 4. 선사의 이름, 부호, 주소, 유선전화, 휴대전화 번호
Name, Code, Address, Phone number, Mobile of Owner (Operator) |
| | 5. 대리점의 이름, 부호, 주소, 유선전화, 휴대전화 번호
Name, Code, Address, Phone number, Mobile of Agent of Ship |
| | |

6. 선박계선장소[선석, 장소] Position of the ship (Berth or Station)

7. 항해기록 Brief Particulars of Voyage

- 전 출항지 및 출항일시 Time, Date of Departure from last Port: / 년(yyyy) 월(mm) 일(dd) 시(hh) 분(mm)

- 경유지 Stopovers: / / /

- 경유지 출항일 Date of Departure of Stopovers: - - / - - / - - / - - / yyyy/mm/dd

- 출항예정일시 Estimated Date and Time of Departure: 년(yyyy) 월(mm) 일(dd) 시(hh) 분(mm)

- 차항지 Next port of Call:

| | |
|---|---|
| 8. 화물명세 Brief Description of Cargo
- 화물명 Name of Cargo(Unit: ton):
- 적재 톤수 Total Cargo:
- 양하·적하 톤수 Load/Unload Cargo:
- 위험물 톤수 Dangerous Cargo:
- 환적(換積) 톤수 Transshipment Cargo: | 9. 승무원 수 Number of Crew
- 전체 Total: 명
- 한국인 Korean: 명
- 외국인 Foreigner: 명 |
|---|---|

| | |
|--|--|
| 10. 승객 수 Number of Passenger
- 전체 Total: 명 (6세 이상: 명)
- 한국인 Korean: 명 (6세 이상: 명)
- 외국인 Foreigner: 명 (6세 이상: 명)
※ 국내항 간 편승/상륙
Coastal Travellers / Alien permitted landing while the ship is in Korea: / 명 | 11. 입항목적 Purpose of Arrival |
| | 12. 항해 구분 Classification of Voyage |
| | 13. 검역 구분 Type of Quarantine |
| | 14. 해당 연도 입항횟수 Number of arrival this year |

15. 항만시설 사용료 할인율 및 할인 사유 Rate & Basis for Port Charge
할인율 Rate: [] 할인 사유 Basis: []

16. 예선 사용 및 도선 요청 여부 Any Request of Tug Boat & Pilot
[]예선 Tug Boat []예선 면제 Tug Boat Exemption []도선 Pilot []도선 면제 Pilot Exemption

17. C.I.Q. 수속 장소 및 일시 Date/Place of C.I.Q. Processing

18. 승무원 및 승객의 변동 유무 Any Change in Passenger or Crew? [] (Yes/ No)

○ 외지에서의 한국승무원 변동사항 Change of Korean crew in foreign ports

- 승선 Embarked: 명 전선 Transference: 명
- 하선 Disembarked: 명 낙오 Quit or missed ship: 명

○ 이 항구에서 승선·하선한 승무원 / 승객 Number of Crew or Passenger Embarked / Disembarked at this port

- 승무원 Crew
· 승선 출국 Embarked: 명 · 하선 입국 Disembarked: 명
· 전입 Embarkation for ship to ship movement: 명
· 전선 Disembarkation for ship to ship movement: 명

- 승객 Passenger
· 승선 Embarked: 명 · 하선 Disembarked: 명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19. 비고 Remarks

○ 사회안전위해물품 소지 여부 (Yes/No)

Are there any articles on board deemed hazardous to public safety?

- 마약류 Illicit drugs [] · 총기 및 도검류 Arms []

○ 승무원의 면세품 소지 여부 [] (Yes/No)

Any crew having duty free items?

○ 면세 선용품 적재 여부 [] (Yes/No)

Any duty free supplies for ship?

○ 외지 선용품 구입/외지 수리 여부 [] (Yes/No)

Any ship's supplies purchased or repair from outside of Korea?

○ 승무원 복수항 상륙 허가자 또는 복수 승무원 상륙 허가자 승선 여부 [] (Yes/No)

Any crew members with landing permission during ship's staying in Korea or with multiple landing permit?

○ 감염전염병 등 환자/사망자 발생 여부 [] (Yes/No)

Any infectious diseases or deaths on board?

○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 여부 [] (Yes/No)

Is this ship a type of a Bare Boat Charter Hire Purchase?

○ 유류오염 손해배상을 위한 보장계약 체결 여부 [] (Yes/No)

Any insurance of other financial security to cover the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 유효한 보장계약증명서 또는 손해배상 보장계약증명서의 비치 여부 [] (Yes/No)

CLC Certificate or Bunker Convention Certificate on board?

○ 유조선의 이중선체 여부 [] (Yes/No)

Is tanker a double hull type?

○ 북한으로 반입되는 화물 또는 북한으로부터 반출되는 화물 적재 여부 [] (Yes/No)

Loading of cargoes originating from or destined for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 최근 1년 이내에 북한기항 여부 [] (Yes/No), 기항한 경우 기항한 북한 항만명 []

Is this ship called a por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ithin 1 year from now? In case what name of the port is?

○ 부선 호출부호 []

Call sign of Ship towed or Barge with no power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yyyy) 월(mm) 일(dd)

신고자[선장(기장) 또는 해운대리점]

(서명 또는 인)

the Master or authorized agent

(Signature)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또는 항만공사 사장 귀하

TO. Administrator of _____ Regional Oceans & Fisheries Office

(The Provincial Governor or Mayor, President of Port Authority)

| | | |
|---------------------------------|--|-----------|
| 첨부서류
Supplementary Documents | 1. 승무원 명부 Crew List [] 2. 승객 명부 Passenger List []
3. 선용품 목록 Ship's Stores List []
4. 승무원 휴대품 목록 Crew's Effects List [] | 수수료
없음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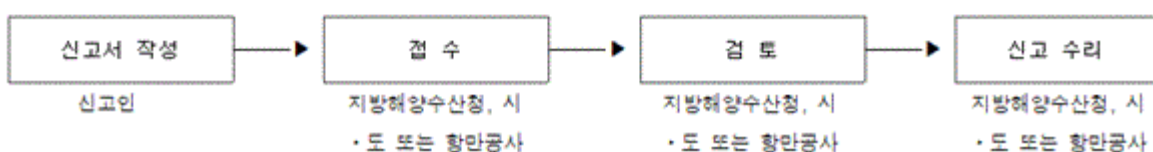
작성방법

- 입항·출항 24시간 전에는 "최초"란에, 입항·출항을 확정할 때에는 "최종"란에, 변경할 때에는 "변경"란에, 취소할 때에는 "취소"란에 각각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박계선장소(선석, 장소)"란에는 선박의 접안 또는 계선 장소를 적습니다.
- "경유지" 및 "경유지 출항일"에는 모든 경유지를 대상으로 최초 출항지로부터 경유한 역순으로 적습니다.
- "화물명"에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및 개정의정서」에 따른 통일상품목록분류표(HS 코드) 중 대표화를 두 자리 코드를 적고, 총 적재화를 중 앙하·적하/위험물/환적에 해당하는 통수를 적습니다.
- "※ 국내항 간 편승/상륙"에는 국내항 간의 승선 허가자와 입국허가를 받은 통승 출항 예정 외국인의 수를 적습니다.
- "입항목적"란에는 다음 중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1. 앙하·적하 2. 앙하 3. 적하 4. 선박수리 5. 해양사고 6. 승무원 교대 7. 여객 상륙 8. 급유 9. 선용품 적재 99. 기타
- "항해구분"란에는 다음 중 해당하는 선박안 코드를 적습니다.
 1. 외국 국적 내항선 2. 일시 외항 3. 내항·외항 자격 변경 4. 나포선박 5. 개인항해 6. 신조선(新造船)
 7. 수출선박 8. 선박명 변경 9. 폐선 예정 10. 남북한 출입 11. 실습선 또는 관공선(官公船) 12. 원양조업선
- "검역구분"란에는 다음 중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1. 승선검역 2. 무전검역 3. 특별검역 4. 검역면제 5. 검역완료
- "항만시설사용료 할인율 및 사유"란에는 다음 중 해당하는 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 할인: 1. 10% 2. 15% 3. 50% 4. 80% 5. 100%
 - 사유: 1. 군함 2. 관공선(官公船) 3. 수리 4. 해양사고 5. 투자비 보전 6. 기타
- "수속 장소 및 일시"란에는 입항·출항하기 전에 세관·출입국관리·검역(C.I.O.) 기관의 수속을 받으려는 예정 장소 및 일시를 적습니다. 1. 항구명 2. 내항 3. 외항
- "이 항구에서 승선·하선한 승무원/승객"란에는 입항의 경우에는 승선·하선 예정 인원수를, 출항의 경우에는 승선·하선 인원수를 각각 적습니다.
- 첨부서류 중 "선용품 목록" 및 "승무원 휴대품 목록"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지 확인하여 받습니다.
-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항·출항할 때마다 다음 표에 따른 부수의 서면을 제출합니다.

Copies of submit (every time of arrival or departure respectively)

| 제출서류 | 지방해양수산청
Regional Oceans &
Fisheries Office | 세관
Customs | 출입국관리사무소
Immigration Office | 검역소
Quarantine Office |
|--|--|---------------|--------------------------------|--------------------------|
| 외항선 출입 신고서(허가신청서)
General Declaration | 1 | 1 | 1 | 1 |
| 승무원 명부 Crew List | 1 | 1 | 1 | 1 |
| 승객 명부 Passenger List | 1 | 1 | 1 | 1 |
| 선용품 목록
Ship's Stores List | | 1 | | |
| 승무원 휴대품 목록
Crew's Effects List | | 1 | | |

처리절차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7. 16.>

출입 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호출부호가 없는 선박은 호출부호란에 선박번호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3일 |
| 선박 | IMO번호(또는 호출부호) | 연도-입항횟수-신청횟수 - - | | |
| | 선명 | 총톤수 G/T | | |
| 선주
또는 해운
대리점 | 업체명 | 업체코드 | |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 | 업체 주소 | 전화번호 | | |
| 입항
·
출항 | 입항일시 | 년 | 월 | 일 시 분 |
| | 출항예정일시 | 년 | 월 | 일 시 분 |
| 허가사항 | 장소 코드 | 장소명 | | |
| | 기간 | 년 | 월 | 일 시 분 |
| | 사유 | |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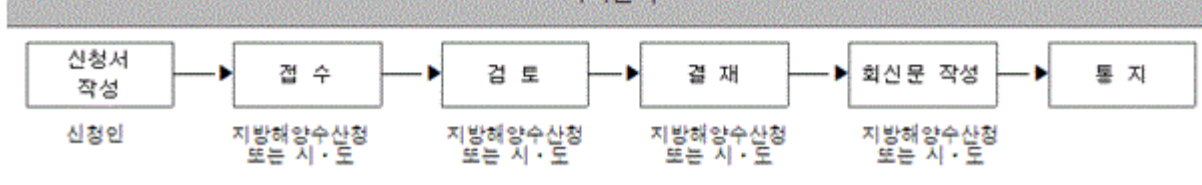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승무원 명부
2. 승객 명부
3.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받은 서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남한과 북한 사이를 항행하는 선박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선박계선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호출부호가 없는 선박은 호출부호란에 선박번호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선박 | IMO번호(또는 호출부호) | 연도-입항횟수-신청횟수
- - - | | |
| | 선명 | 총톤수
G/T | | |
| 선주
또는 해운
대리점 | 업체명 | 업체코드 | |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 | 업체 주소 | 전화번호 | | |
| 입항
·
출항 | 입항일시 | 년 | 월 | 일 시 분 |
| | 출항예정일시 | 년 | 월 | 일 시 분 |
| 신고사항 | 장소 코드 | 장소명 | | |
| | 기간 | 년 | 월 | 일 시 분 |
| | 사유 | |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선박계선을 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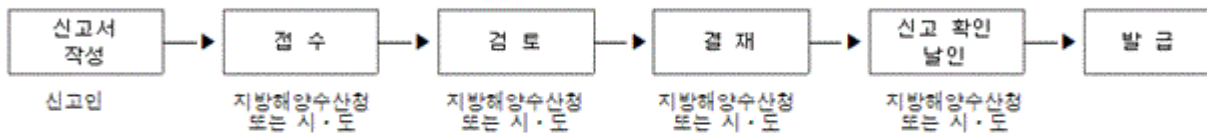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귀하

처리절차



제 호

선박계선 신고 확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계선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직인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7. 16.>

예선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 |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20일 | | |
| 신청인 | 상호(명칭) | | 전화번호 | | | |
| | 성명(대표자) | | | | | |
| | 주소 | | | | | |
| 사업소 | 소재지 | | | | | |
| | 사업구역(항만명) | | | | | |
| | 사업개시 예정일 | | | | | |
| 예선별
선박제원 | 선박번호 | 선명 | 총톤수 | 주기관
마력 | 추진기형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선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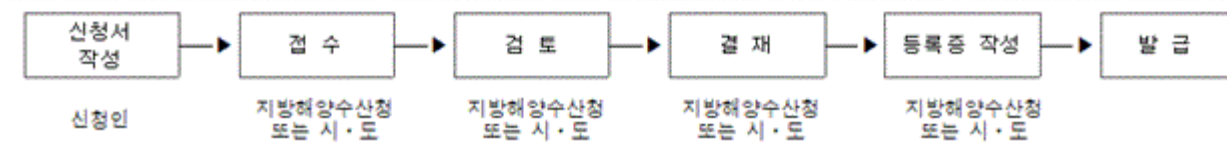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귀하

| | |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정관(법인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사업계획서
3. 예선의 척수·제원 현황 및 소화장비 등의 시설현황
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 발행하는 예항력 증명서 | 수수료

5천원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 |

처리절차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예선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10일 |
| 신청인 | 상호(명칭) | 전화번호 | |
| | 성명(대표자) | | |
| | 사업소의 소재지 | | |
| 변경 사항 | | | |
| 변경 사유 | |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귀하

| | | |
|------|----------------|-----------|
| 첨부서류 |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graph LR
      A[신청서 작성] --> B[접수] --> C[검토] --> D[결재] --> E[등록증 작성] --> F[발급]
      A --- A1[신청인]
      B --- B1[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C --- C1[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D --- D1[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E --- E1[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F --- F1[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 7. 4.>

등록번호 제 호

예선업 등록증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소의 위치(소재지)

사업개시예정일

등록선박의 표시

| 사업구역
(항만명) | 선박번호 | 선명 | 총톤수 | 주기관역 마력 | 추진기형 | 비고 |
|---------------|------|----|-----|---------|------|----|
| | | | | |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0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선업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직인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1. 20.>

과징금 납부통지서
(수납기관보관용)

| 발행번호 | | | |
|------|---------|---|---|
| 납부자 | 상호(명칭) | | |
| | 성명(대표자) | | |
| 위반일 | | | |
| 위반행위 | | | |
| 납부금액 | 원 | | |
| 납부기한 | 년 | 월 | 일 |
| 수납기관 | |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직인

수납

과징금 영수통지서
(지방해양수산청, 시·도지사 보관용)

| 발행번호 | | | |
|------|---------|---|---|
| 납부자 | 상호(명칭) | | |
| | 성명(대표자) | | |
| 위반일 | | | |
| 위반행위 | | | |
| 납부금액 | 원 | | |
| 납부기한 | 년 | 월 | 일 |
| 수납기관 | | | |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귀하

수납

과징금 납부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 발행번호 | | | |
|------|---------|---|---|
| 납부자 | 상호(명칭) | | |
| | 성명(대표자) | | |
| 위반일 | | | |
| 위반행위 | | | |
| 납부금액 | 원 | | |
| 납부기한 | 년 | 월 | 일 |
| 수납기관 | | | |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수납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독 촉 장

| | | |
|-------------|---------|--|
| 발행번호 | | 발행일 |
| 사
업
장 | 상호(명칭) | |
| | 성명(대표자) | |
| | 주 소 | |
| 위반행위의 종류 | | |
| 과징금 | | 원 |
| 지정수납기관 | | |
| 납부기한 | | |
| 공지사항 | | 위의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

귀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독촉하오니 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지정 수납기관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직인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항만운영정보시스템(<http://new.port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16.>

위험물 반입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호출부호가 없는 선박은 호출부호란에 선박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즉시 |
|------|--|---|----------|-------------|
| 반입인 | 대표자 성명 | | 생년월일 | |
| | 업체명 | | 업체코드 | |
| | 주소 | | 전화번호 | |
| 선박 | 선명 | | 호출부호 | |
| | 선박 종류 | | 총톤수(G/T) | |
| | 해당연도-입항횟수 | | 전 출항지 코드 | |
| 반입사항 | 품명 | 외 | 총중량(MT) | 컨테이너수량(TEU) |
| | 구분 | [] 해상 반입 [] 육상 반입 | 작업횟수[] | |
| | 운송형태 | [] 컨테이너위험물 [] 산적액체위험물 [] 벌크 포장위험물 [] 기타 | | |
| | 목적 | [] 양하 [] 적하 [] 환적 [] 기타 | | |
| 하역사항 | 업체명 | | | 업체코드 |
| | 하역기간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 | 하역장소 코드 |
| | 하역방법 및 특이사항 | |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 반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귀하

| | | | |
|------|-----------------------|-----|----|
| 첨부서류 |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위험물 일람표 | 수수료 | 없음 |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신고인

→

접 수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

검 토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

결 재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

신고 확인
날인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

발 급

제 호

위험물 반입신고 확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직인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0. 9. 28.>

위험물 일람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
|-----------|------------------------------|----------------|
| 업체코드 | 선명 | IMO번호(또는 호출부호) |
| 해당연도-입항횟수 | 구분
[]해상 반입 []육상 반입 | |

[illegible]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인화물질"란에는 위험물 반입신고서에 적은 인화물질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2. "증명서번호"란에는 수입화물의 경우에는 적하목록 관리번호(MRN: Manifest Reference No.)를, 수출화물 또는 연안운송화물의 경우에는 위험물컨테이너 수납검사증 번호 또는 위험물 운송조합인증서 번호를 적습니다.
3. "작업구분"란에는 다음 중 해당하는 코드를 기재합니다.
1. 양하 2. 양하T/S 3. 적하 4. 적하T/S 5. 통과화물 6. 급유 9. 기타
4. "품명"란에는 적재화물의 품명을 명확히 적습니다.
(예: 유류의 경우에는 가솔린, 중유, 동유, 원유 등으로 세분하여 적습니다.)
5.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2호에 따른 탱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선박이 아닌 선박의 경우 통과화물(선박에 적재된 위험물 중 해당 항구에 내리지 않는 위험물을 말합니다)의 종류가 많아서 모두 적기가 곤란하면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 한 종류에 대해서만 적습니다. 이 경우 "품명"란에는 ○○ 외 ○종(예: 동유 외 20종)으로, "중량"란에는 통과화물의 총중량을 각각 적고 그 구체적인 내용(위험물 적하목록 등)은 렉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6. 호출부호가 없는 선박은 호출부호란에 선박번호를 적습니다.
7. 작업횟수는 해당 항만에서 작업한 횟수를 적습니다.
8. 「선박의 인화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위험물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UN No."란, "CLASS No."란, "품명"란 및 "중량(M/T)"란을 작성합니다.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신설 2020. 9. 28.>

화물적부도

| | | 탱크
번호 | 1번 | 2번 | 3번 | 4번 | 5번 | 6번 | 7번 | 8번 |
|--------|----|--------------|----|----|----|----|----|----|----|----|
| 선
수 | 우현 | 화물
명칭 | | | | | | | | |
| | | 적재량
(M/T) | | | | | | | | |
| | 중앙 | 화물
명칭 | | | | | | | | |
| | | 적재량
(M/T) | | | | | | | | |
| | 좌현 | 화물
명칭 | | | | | | | | |
| | | 적재량
(M/T) | | | | | |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선박의 구조와 화물의 적재 상태에 따라 탱크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탱크를 추가·삭제하는 등 화물적부도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화물적부도에는 화물의 종류, 적재량 및 적재 위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비어있는 탱크의 경우 화물명칭란에 빈 탱크임을 표시합니다.
3. 화물의 종류, 적재량 및 적재 위치를 표시한 그림 자료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로 화물적부도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변경승인·갱신 신청서

[]승인 []변경승인 []갱신

※ 색상이 어두운 남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4일 |
| 신청인 | 상호(명칭) | 전화번호 | |
| | 성명(대표자) | | |
| | 주소 | | |
| 사업소 | 소재지 | | |
| | 사업구역(항만명) | | |
| | 변경사항 적용일 |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자체 안전관리계획의 ☐승인·☐변경승인·☐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귀하

| | | |
|------|-------------|-----------|
| 첨부서류 | 자체안전관리계획 1부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검 토 | → | 결 재 | → | 회신문 | → | 통 지 |
| 신청인 |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 |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제 호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증

성 명:

생 년 월 일:

소 속:

위 사람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직인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신청인 | 명칭(상호) | 전화번호 | |
| | 교육기관 소재지 | | |
| | 대표자 성명 |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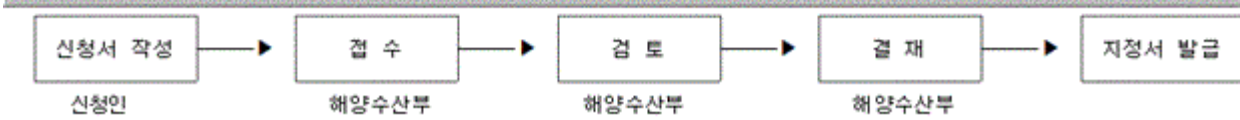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교육기관의 시설물 사용권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세 또는 임대 계약서 사본 등)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증명서류(재직증명서 사본) 1부
3. 연간 교육일정, 교육장소, 강사진, 교육교재 등을 포함한 교육계획서 | 수수료
없음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 |

처리절차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제 호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기관 지정서

명 칭:

소재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의 기관을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제 호

수 료 증

1. 과 정:
2. 관 련 규 정:
3. 기 간:
4. 소 속:
5. 성 명:
6. 생 년 월 일:

위 사람은 에서 실시한 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에 따라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교육기관의 장

직인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 정류24(www.gov.kr) 또는 항만운영정보시스템(www.p
22. 1. 20.> ort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수리 [] 허가신청서 · [] 신고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허가번호 | 처리기간 | 허가는 1일
신고는 즉시 |
|------|------------------------|------|------------------|------------------|
| 신청인 | 업체명(또는 성명) | |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 |
| | 전화번호(휴대폰) | | | |
| | 주소 | | | |
| 신청내용 | 선박의 소유자(용선주) | | | |
| | 선박 종류 · 선명 · 톤수 및 호출부호 | | | |
| | 수리 범위 | | | |
| | 수리 방법 | | | |
| | 수리 기간 | | | |
| | 수리 장소 | | | |
| | 화물 적재 여부 | | | |
| | 허가(신고) 조건 | | | |
| 비고 | | |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선박수리 허가를 신청합니다(선박수리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작업계획서(취급장비 명세를 포함합니다)
2. 해당 작업에 필요한 작업자의 자격증 사본 1부(수리 대상 선박의 선원이 작업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 |
| 신고서 작성
신청서 작성
신고인
신청인 | 접수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 검토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
| 결재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 신고·허가
확인 날인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 발급 |

제 호

선박수리 [] 허가 [] 신고 확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신고를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직인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2. 1. 20.> 정무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험 예방조치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요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일 |
| 요청인 | 성명(또는 업체명) | 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 | 전화번호(휴대폰) | | |
| | 주소 | | |
| 요청내용 | 선명 | | |
| | 해양사고 종류 | | |
| | 위치 | | |
| | 설치 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 설치내용 | 실제 설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 | 설치금액(사용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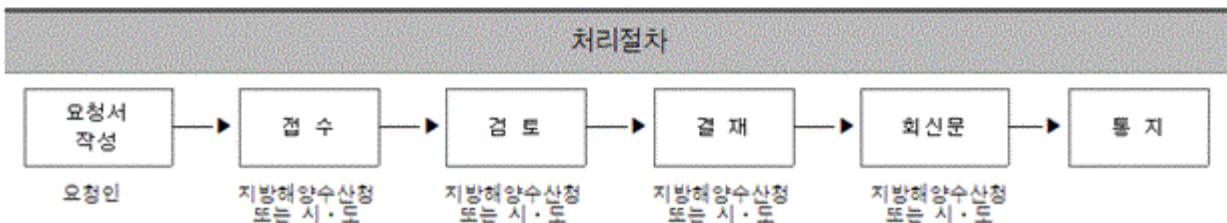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 등의 설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귀하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2. 1. 20.> 정무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작업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호출부호가 없는 선박은 호출부호란에 선박번호를 기재하십시오.

|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허가번호 | 처리기간 | 1일 |
| 신청인 | 업체명(또는 성명) | |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 |
| | 전화번호(휴대폰) | | 업체코드 | |
| | 주소 | | | |
| 선박 | IMO번호(또는 호출부호) | | 연도-입항횟수-신청횟수 | |
| | 선명 | | 총톤수(G/T) | |
| 공사
·
작업 | 종류 | | | |
| | 내용 | | | |
| | 방법 | | | |
| | 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 | |
| | 장소 | | | |

허가조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작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작업계획서(취급장비 명세를 포함합니다)
2. 해당 작업에 필요한 작업자의 자격증 사본 1부 | 수수료
1천원 |
|------|--|------------|

처리절차



제 호

공사·작업 허가 확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직인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행사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1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 | 주소 | | | |
| 신청내용 | 행사의 종류 | | | |
| | 목적 | | | |
| | 방법 | | | |
| | 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 | |
| | 구역 | | | |
| | 장소 | | | |
| 비고 | | |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의 행사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귀하

| | | |
|------|-------------------|-----------|
| 첨부서류 | 행사계획서(위치도를 포함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

검 토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

결 재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

허가 확인
날인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

발 급

제 호

행사 허가 확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직인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 정부24(www.gov.kr) 또는 항만운영정보시스템(www.port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1. 20.>

부유 등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1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 | 주소 | | | |
| 신청내용 | 화물의 종류 | | | |
| | 수량 | | | |
| | 목적 | | | |
| | 방법 | | | |
| | 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 | |
| | 장소 및 구간 | | | |
| | 허가조건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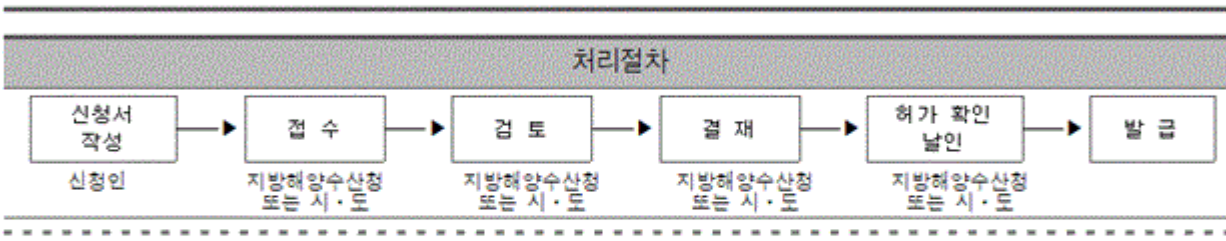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유 등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귀하



제 호

부유 등 허가 확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직인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선박 출항 중지 통지서

Notice of Departure Suspension

| | |
|--|----------------------|
| 발행번호 | 발행일 |
| 선박명 Name of Vessel | 선장명 Name of Master |
| 선박번호 Number of Register | 선박 종류 Kind of Vessel |
| 총톤수 Gross Tonnage | 국적 Flag |
| 입항일 Date of Entrance | |
| 년 월 일 | |
| 출항예정일 Expected Date & Time of Departure | |
| 년 월 일 | |
| 출항중지 사유 Reasons of Departure Suspension | |
| | |
| 출항중지 기간 및 해제조건 Duration of Departure Suspension & Terms of its Release | |
|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항중지를 통지합니다.

It is notified that the departure out of port of above mentioned vessel be suspended.

년(yyyy) 월(mm) 일(dd)

지방해양수산청장

Administrator of _____ Regional Oceans & Fisheries Office

(시·도지사)

The Provincial Governor or Mayor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앞 쪽)

| |
|--|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bottom: 10px;"> 제 호 </div> <h2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0;">무역항 단속공무원증</h2>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20px 0;"> <p>사 진</p> <p>3cm × 4cm</p> <p>(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p>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성 명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기 관 명 </div> |
|--|

60mm × 90mm [백상지 150g/㎡]

(색상: 연노랑)

(뒤 쪽)

| |
|---|
| <h2 style="margin: 0;">무역항 단속공무원증</h2> |
| <p>소속/직급:</p> <p>성 명:</p> <p>생년월일:</p> <p style="margin-top: 20px;">위 사람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31조에 따라 무역항 단속공무원
임을 증명합니다.</p>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 년 월 일 </div>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기 관 장 명 의 직인</p>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사람은 무역항 단속 검사·확인 업무
에 관한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 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중계망사업자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
| 신청인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 |
| | 주소 | 전화번호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에 따라 중계망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정관
2. 자본금·주주 현황 등 사업자의 일반 현황을 기재한 서류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설비를 갖추었거나 해당 설비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을 가졌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의 신원증명서
6. 사업계획서
7. 전자문서 중계망 운영에 관한 업무설명서 | 수수료
없음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출입국 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인 임원의 경우로서 신원증명서에 갈음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해양수산부장관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외국인등록번호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 × 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지정번호 제 호

중계망사업자 지정서

1. 법 인 명:
2. 대표자 성명(대표자의 생년월일):
3. 법인등록번호:
4. 사무소의 소재지:
5. 지정된 사업의 범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에 따른 사업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3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계망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증명
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도선법

[시행 2024. 6. 30.] [법률 제19867호, 2023. 12. 29.,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 051 - 773 - 5772, 5771

제1장 총칙 <개정 2009. 2. 6.>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선사면허(導船士免許)와 도선구(導船區)에서의 도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선구에서 선박 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선”이란 도선구에서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하여 그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선사”란 일정한 도선구에서 도선업무를 할 수 있는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도선수습생”이란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한 후 일정한 도선구에 배치되어 도선에 관한 실무수습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3조(적용 범위) 이 법 중 선장에 관한 규정은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장 도선사면허 등 <개정 2009. 2. 6.>

제4조(도선사면허) ① 도선사가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선사면허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제17조에 따른 도선구별로 한다. <개정 2017. 3. 21.>

1. 1급 도선사
2. 2급 도선사
3. 3급 도선사
4. 4급 도선사

③ 도선사면허의 등급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21.>

④ 도선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5조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요건 및 등급별 기준을 갖추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도선사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도선사면허의 등급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17. 3. 21.>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면허를 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도선사면허 원부(原簿)에 등록하고 도선사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3. 21.>

⑥ 도선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거나 변경사항을 개서(改書)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3. 21.>

1.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
2.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3.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 2. 6.]

제5조(도선사면허의 요건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도선사면허 등급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 기준에 적합한 사람에게 도선사면허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18. 9. 18.>

1. 총톤수 6천톤 이상인 선박의 선장으로 3년 이상 승무한 경력(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일 전 5년 이내에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을 포함하여야 한다)이 있을 것
2.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 업무를 하려는 도선구에서 도선수습생으로서 실무수습을 하였을 것
3. 제15조에 따른 도선사 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4.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하였을 것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7. 3. 21.]

제5조의2(면허증의 대여 금지 등) ① 도선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도선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면허증을 대여받아서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면허증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 2. 18.]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선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 3. 18., 2017. 3. 21.>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삭제<2017. 3. 21.>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선박직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기사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선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두 번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면허가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09. 2. 6.]

제6조의2(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은 제4조제5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도선사가 제4조제4항 후단에 따라 도선사면허 등급의 변경을 신청하여 도선사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선사가 처음으로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을 말하고,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새로 받은 경우에는 도선사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 또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후에도 그 면허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사람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도선사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 ④ 제3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도선사면허의 효력을 회복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중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신청하기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도선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같은 항에 따른 교육 외에 보수(補修)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교육 및 보수교육의 내용, 방법,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6조의3 삭제 <2023. 12. 29.>

제6조의4 삭제 <2023. 12. 29.>

제7조(도선사의 정년) ① 도선사는 65세까지 도선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필수도선사 경력, 교육훈련 이수 여부 및 신체적 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도선사에 대하여는 도선사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8., 2023. 12. 29.>

② 도선사의 정년 또는 연장된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을,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을 각각 정년이 되는 날로 본다.<신설 2023. 12. 29.>
[전문개정 2009. 2. 6.]

제8조(신체검사) ① 도선사가 되려는 사람은 최초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도선사는 제4조제5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도선사가 제4조제4항 후단에 따라 도선사면허 등급의 변경을 신청하여 도선사면허를 받은 경우나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새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선사가 처음으로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그 2년이 되는 날의 전후 3개월 이내에 정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률 제7788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정년이 연장된 도선사 및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년이 연장된 도선사는 65세가 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그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개월 이내에 정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 3. 21., 2018. 9. 18., 2023.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합격기준과 검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9. 2. 6.]

제9조(면허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9., 2011. 6. 15., 2013. 3. 23., 2013. 5. 22.,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20. 2. 18., 2023. 7. 2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면허의 등급별로 도선할 수 있는 선박 외의 선박을 도선한 경우
- 2의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선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3. 제6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8조제2항에 따른 정기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8조제3항에 따른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 요청을 거절한 경우
7.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차별 도선을 한 경우
8. 도선 중 해양사고(「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말한다)를 낸 경우. 다만, 그 사고가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업무정지기간에 도선을 한 경우
10.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선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1. 「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제2호를 위반하여 약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도선을 한 경우

- ② 해양수산부장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 ③ 해양수산부장은 제1항에 따라 면허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해당 도선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도선사는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 ④ 해양수산부장은 제1항제8호의 경우 해당 해양사고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안전심판에 계류 중이면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은 그 사고가 중대하여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도선사에게 4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도선업무를 중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 ⑤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해양수산부장이 면허증을 반납받은 날부터 계산한다.<개정 2013. 3. 23.>
- ⑥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09. 2. 6.]

제10조 삭제 <1999. 2. 8.>

제11조 삭제 <1999. 2. 8.>

제12조 삭제 <1999. 2. 8.>

제13조(정보의 제공 등) ① 선장은 도선사가 도선할 선박에 승선한 경우에는 그 선박의 제원(諸元), 흘수(吃水), 기관(機關)의 상태, 그 밖에 도선에 필요한 자료를 도선사에게 제공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② 도선사는 도선할 선박의 선장에게 항만의 특성, 도선 시 해당 선박의 이동 경로와 속도, 접안(接岸) 방법, 예선(曳船)의 배치 등을 포함한 도선계획을 제공하고 설명하여야 한다.<신설 2017. 3. 21.>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7. 3. 21.]

제14조(도선사의 수급계획) ① 해양수산부장은 매년 도선구별로 도선사 수급계획(需給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도선사 수급계획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15조(시험) ① 해양수산부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도선사 수급계획에 따라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을 실시한다. <개정 2013. 3. 23.>

② 도선사 시험의 실기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신설 2019. 1. 15.>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의 과목·방법 및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 15.>

[전문개정 2009. 2. 6.]

제16조(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이나 도선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중지시키거나 시험을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시험의 중지 또는 무효의 처분을 받은 응시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이나 도선사 시험을 볼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2. 6.]

제3장 도선 및 도선구 <개정 2009. 2. 6.>

제17조(도선구) 도선구의 명칭과 구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18조(도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장은 해당 도선구에 입항·출항하기 전에 미리 가능한 통신수단 등으로 도선사에게 도선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도선구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

2. 도선사의 승무를 희망하는 선장

② 도선사가 제1항에 따른 도선 요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선박의 운항이 제한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도선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해당 도선업무의 수행이 도선약관(導船約款)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도선 요청을 한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승선·하선 구역에서 도선사를 승선·하선시켜야 하며, 도선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선장은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게 도선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⑤ 도선사가 선박을 도선하고 있는 경우에도 선장은 그 선박의 안전 운항에 대한 책임을 면제 받지 아니하고 그 권한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18조의2(차별 도선 금지) 도선사는 도선 요청을 받은 선박의 출입 순서에 따르지 아니하는 차별 도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3. 21., 2020. 2. 18.>

1. 긴급화물수송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부득이 출입 순서에 따라 접안 또는 이안(離岸)시키지 못하는 경우
2.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한꺼번에 많은 도선 수요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항만의 효율적 운용 및 항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2. 6.]

제19조(도선의 제한) ① 도선사가 아닌 사람은 선박을 도선하지 못한다.

② 선장은 도선사가 아닌 사람에게 도선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0조(강제 도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선구에서 그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1.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2.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3.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2천 톤 이상인 선박. 다만, 부산(釜船)인 경우에는 예선에 결합된 부산으로 한정하되, 이 경우의 총톤수는 부산과 예선의 총톤수를 합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장이 해당 도선구에서 도선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을 포함한다)의 선장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해당 도선구에 입항·출항하는 경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선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선장의 입항·출항 횟수와 선박의 범위를 도선구별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항해사 자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승무자격을 갖춘 자가 조선소에서 건조·수리한 선박을 시운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해당 도선구에 입항·출항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강제 도선의 면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21조(도선료) ①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료를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도선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③ 도선사는 도선을 한 경우에는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도선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④ 제3항에 따라 도선료의 지급을 청구받은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도선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5.>

⑤ 도선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도선료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 1. 15.>

[전문개정 2009. 2. 6.]

제22조(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선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를 다른 도선구에 배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도선훈련을 받게 한 후 도선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다른 도선구에 배치되어 도선훈련을 마친 도선사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도선사면허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20. 2. 18.>

② 제1항에 따른 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23조(도선수습생 등의 승선) 도선사의 승무를 요청한 선장은 도선사가 도선훈련이나 실무수습을 위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선훈련을 받고 있는 도선사 및 도선수습생 각 1명과 함께 승선하더라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4조(도선사의 강제 동행 금지) 선장은 해상에서 해당 선박을 도선한 도선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구 밖으로 동행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5조(도선 시의 안전조치) ① 선장은 도선사가 안전하게 승선·하선할 수 있도록 승선·하선 설비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안전한 입항·출항을 위하여 제34조의2에 따른 도선운영협회의 의견을 들어 도선안전절차를 도선구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2017. 3. 21.>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7. 3. 21.]

제26조(도선기 등) ① 도선업무에 종사하는 도선선(導船船)에는 도선기(導船旗)를 달아야 한다

② 도선기의 형식 및 계양과 신호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27조(도선선 및 도선선료) ① 도선사는 도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선선과 그 밖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도선선의 장비와 의장(意匠)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선료를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9. 1. 15.>

⑤ 도선사는 도선을 한 경우에는 도선을 한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도선료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도선선료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9. 1. 15.>

⑥ 도선사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한 도선선료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 1. 15.>

[전문개정 2009. 2. 6.]

제28조 삭제 <2009. 2. 6.>

제4장 보칙 <개정 2009. 2. 6.>

제29조(보고·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운항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사 또는 선장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도선사사무소, 그 밖의 사업장 또는 도선선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을 적은 서면을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30조 삭제 <1999. 2. 8.>

제31조 삭제 <1999. 2. 8.>

제32조 삭제 <1999. 2. 8.>

제33조 삭제 <1999. 2. 8.>

제34조 삭제 <2005. 12. 29.>

제34조의2(도선운영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원활한 도선 운영을 위하여 도선사를 대표하는 사람과 이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도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의회에서 협의·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거나 다시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35조 삭제 <1999. 2. 8.>

제36조(도선약관) ①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료 등에 관한 도선약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선약관이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37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업무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2022. 1. 4.>

1.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
2.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보수교육
3.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의 실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1. 4.>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7. 3. 21.]

제37조의2(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이 법에 따른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 6. 9., 2020. 1. 29.>

[전문개정 2009. 2. 6.]

제3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도선사면허증의 발급·갱신·재발급 등을 신청하는 사람
2.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이나 도선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9. 2. 6.]

제5장 벌칙 <개정 2009. 2. 6.>

제39조 삭제 <2023. 12. 29.>

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3. 27., 2020. 2. 18.>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람
- 1의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선사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을 대여한 사람
- 1의3.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도선사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면허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도선사 명의를 사용이나 그 면허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2. 제19조를 위반하여 도선사가 아니면서 도선을 한 사람 또는 도선사가 아닌 사람에게 도선을 하게 한 선장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선사가 승무하지 아니한 선박을 운항한 선장

[전문개정 2009. 2. 6.]

[제39조에서 이동 <2018. 9. 18.>]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선 요청을 거절한 도선사
2.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사에게 도선을 하지 못하게 한 선장
3. 제18조의2 본문을 위반하여 차별 도선을 한 도선사

[전문개정 2009. 2. 6.]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3. 21., 2019. 1. 15.>

1.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의 재발급 또는 개서를 받지 아니한 도선사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면허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통지받고 30일 이내에 도선사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도선사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선박의 제원 등 도선에 필요한 자료를 도선사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한 선장
- 3의2.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선할 선박의 선장에게 도선계획을 제공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한 도선사
4.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선사를 승선·하선 구역에서 승선·하선시키지 아니한 선장 또는 승선·하선 구역에서 승선·하선시키려는 선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도선사
5. 제21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도선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도선료를 초과하여 받은 도선사
6. 제23조에 따른 다른 도선구에 배치된 도선사나 도선수습생의 승선을 거부한 선장
7.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선·하선 설비 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선장
- 7의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선기를 달지 아니한 도선선의 선장
8.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선선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도선사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도선선료를 초과하여 받은 도선사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도선사 또는 선장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부칙 <제3908호, 1986.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도선사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도선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도선수습생 전형시험 합격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법 제5조제1호에 의한 선장으로서의 승무한 경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제4546호, 1993. 3. 10.> (해운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도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중 “해운업법”을 “해운법”으로 한다.

⑤및 ⑥생략

부칙 <제4926호, 1995. 1. 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선료 및 도선선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선료 및 도선선료는 제21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를 마칠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도선료 및 도선선료로 본다.

부칙 <제5289호, 1997. 1. 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선사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유효기간내에서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선할 수 있다.

부칙 <제5809호,1999. 2. 5.>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도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중 “해난사고”를 “해양사고”로 하고, 동조제4항중 “해난사고가 해난심판법에 의한 해난심판에”를 “해양사고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에 의한 해양안전심판에”로 한다.

⑤내지1& 생략

부칙 <제5917호,1999. 2. 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선사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도선사협회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610호,2002. 1. 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428호,2005. 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3@ 생략

3#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3\$ 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788호,2005. 12. 29.>

- ①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정년연장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7조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8379호, 2007. 4. 11.> (항만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 중 “ 「항만법」 제70조의3 ”을 “ 「항만법」 제77조 ”로 한다.

④내지 ⑪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 、 <생략> 、 、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39> 까지 생략

<640>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 및 제4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후단,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제27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29조제1항, 제34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36조제2항, 제37조 및 제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 해양수산부장관 ”을 각각 “ 국토해양부장관 ”으로 한다.

제4조제4항 및 제5항, 제5조제2호 및 제4호, 제17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29조제1항, 제36조제1항 및 제38조 중 “ 해양수산부령 ”을 각각 “ 국토해양부령 ”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5항,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 해양수산부장관 ”을 각각 “ 국토해양부장관 ”으로 한다.

제9조제6항, 제18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 중 “ 해양수산부령 ”을 각각 “ 국토해양부령 ”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 지방해양수산청장 ” 을 “ 지방해양항만청장 ” 으로 한다.

<64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443호,2009. 2.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체검사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도선사(제2항에 따른 도선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그 도선사가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경과연수가 2의 배수에 도달하는 최초의 해부터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7788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도선사가 정년 연장을 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그 신체검사를 받은 날을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후 도선사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신체검사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법률 제7788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정년 연장을 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신체검사로 정년 연장을 위한 신체검사를 갈음한다.

제3조(음주도선의 면허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역이용료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8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수역이용료(연체료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773호,2009. 6. 9.>(항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법률 제9443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 중 “ 「항만법」 제77조 ” 를 “ 「항만법」 제89조 ” 로 한다.

⑨ 부터2&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9873호,2009. 12. 29.>(해상교통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중 “도선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操舵機)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한 경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선한 경우”로 한다.

부칙 <제10801호, 2011. 6. 15.> (해사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제1항”을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3>까지 생략

<574>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후단,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제27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9조제1항, 제34조의2제1항·제3항, 제36조제2항, 제37조 및 제4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호, 제8조제3항, 제9조제6항, 제17조, 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 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9조제1항, 제36조제1항 및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57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805호, 2013. 5.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477호, 2014. 3.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844호, 2014. 11. 1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8>까지 생략

<229>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230>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265호, 2015. 3.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29호, 2017.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선사면허의 등급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2항에 따른 도선사면허를 받은 도선사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선사면허를 받은 도선사로 본다. 이 경우 도선경력은 종전의 제4조제2항에 따른 도선사면허를 받은 날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로 하되, 제9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제외한다.

| 종전의 제4조제2항에 따른
도선사면허를 받은 도선사 |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
른 도선사면허를 받은 도선사 |
|---------------------------------|------------------------------------|
| 1종 도선사 | 1급 도선사 |
| 도선경력이 2년 이상인 2종 도선사 | 2급 도선사 |
| 도선경력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2종 도선사 | 3급 도선사 |
| 도선경력이 1년 미만인 2종 도선사 | 4급 도선사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도선사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도선사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도선사에 대한 제8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 신체검사 기간은 해당 도선사가 종전의 제4조제2항에 따른 도선사면허증을 처음으로 발급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제3조(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2항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은 처음으로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종전의 제4조제2항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종류를 달리하여 도선사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선사가 처음으로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을 말하며, 종전의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른 도선구에 배치되어 도선사면허를 새로 받은 경우에는 도선사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도선사면허 발급일”이라 한다)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선사면허 발급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4년 이상이 경과한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8>까지 생략

<239>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24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783호, 2018. 9.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선수습생 전형시험 경력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 중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일 전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을 포함하는 부분은 2021년 실시하는 도선수습생 전형시

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278호,2019. 1. 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02호,2020. 1. 29.> (항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 중 “ 「항만법」 제89조 ” 를 “ 「항만법」 제26조 ” 로 한다.

1& 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7025호,2020. 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 제18조의2제1호 및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695호,2022. 1.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73호,2023. 7. 25.> (해상교통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중 “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 ” 을 “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 ”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 「해사안전법」 제41조의2제2호 ” 를 “ 「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제2호 ” 로 한다.

⑧부터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9867호,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종사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벌칙에 관하여는 제3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도선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2760호, 2022. 7. 4.,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 051 - 773 - 5772, 5771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1조의2(도선 대상 선박) ① 「도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등급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7. 4., 2024. 1. 16.>

1. 1급 도선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선박

가. 1급 도선사 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 모든 선박

나. 1급 도선사 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 총톤수 12만톤 이하인 선박. 다만,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이하 “위험화물운반선”이라 한다)은 총톤수 10만톤 이하인 선박으로 한다.

2. 2급 도선사: 총톤수 7만톤 이하인 선박. 다만, 위험화물운반선은 총톤수 6만톤 이하인 선박으로 한다.

3. 3급 도선사: 총톤수 5만톤 이하인 선박. 다만, 위험화물운반선은 총톤수 4만톤 이하인 선박으로 한다.

4. 4급 도선사: 총톤수 3만톤 이하인 선박(「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중 같은 법에 따른 해상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은 제외한다). 다만, 위험화물운반선은 총톤수 2만톤 이하인 선박으로 한다.

② 1급 도선사 경력이 1년 미만인 도선사 및 2급 이하 도선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선박을 도선할 수 있다. <개정 2022. 7. 4.>

1. 1급 도선사 경력이 1년 이상인 도선사와 함께 도선하는 경우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도선구(導船區) 외의 도선구에서 도선하는 경우

3.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도선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선박 운항의 안전과 도선구의 운영특성상 1급 도선사 경력이 1년 미만인 도선사 및 2급 이하 도선사가 도선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7. 9. 19.]

제1조의3(도선사면허의 경력 기준) 법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1급 도선사: 2급 도선사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200회 이상 도선업무에 종사한 사람
 2. 2급 도선사: 3급 도선사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200회 이상 도선업무에 종사한 사람
 3. 3급 도선사: 4급 도선사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200회 이상 도선업무에 종사한 사람
- [전문개정 2017. 9. 19.]

제2조(승무경력)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승무경력의 계산과 그 증명에 관하여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7조와 제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2조의2 삭제 <2006. 6. 29.>

제3조(보수교육) 법 제6조의2제6항에서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신청하기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도선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신청하기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도선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 그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
3.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중 해양사고를 내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견책의 징계를 받은 사람

[본조신설 2017. 9. 19.]

제3조의2 삭제 <2024. 6. 25.>

제3조의3 삭제 <2024. 6. 25.>

제4조(도선사의 수급계획) ① 법 제14조에 따른 도선사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2. 18., 2024. 6. 25.>

1. 도선구별로 배치하는 도선사 수의 증감 및 도선사의 배치시기에 관한 사항
2. 도선사를 다른 도선구에 배치하는 것에 관한 사항
- 2의2. 도선구별로 배치하는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필수도선사 수의 증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선사의 수급(需給)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 수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8. 5.]

제5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및 도선사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도선사 수급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도선사 수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따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시험 시행일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22., 2013. 3. 23.>

1. 도선구별 선발예정인원
 2. 시험 일시와 장소
 3. 제출서류와 제출기한
 4. 응시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전문개정 2009. 8. 5.]

제6조(응시원서의 제출)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2.,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이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1. 9. 22., 2013. 3. 23.>

[전문개정 2009. 8. 5.]

제7조(도선수습생 전형시험) ① 법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면접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필기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③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의 과목 및 배점비율은 별표 1과 같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사람의 점수에 별표 2에 따른 해당 응시자의 승무경력 가산점을 합산하여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선발예정인원의 110퍼센트의 범위에 드는 사람을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한다.<개정 2013. 3. 23., 2022. 7. 4.>

⑤ 면접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최초 신체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도선 실무수습자의 수를 고려하여 면접시험 합격자를 결정한다.<개정 2013. 3. 23., 2022. 7. 4.>

⑦ 제4항과 제6항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 같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승무경력이 많은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⑧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8조(도선사 시험) ① 법 제15조에 따른 도선사 시험은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실기시험은 선박 모의 조종장비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험별 과목과 배점비율은 별표 3과 같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받은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도선사 시험합격자를 결정한다.<개정 2013. 3. 23.>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도선 실무수습을 받은 도선구에서 다시 도선 실무수습을 받게 한 후 도선사 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09. 8. 5.]

제9조(합격자 공고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을 실시한 후에는 그 합격자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8. 5.]

제10조 삭제 <2002. 11. 14.>

제10조의2(차별 도선 금지의 예외) 법 제18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항만시설의 형편에 따라 효율적으로 선박의 위치를 배정하기 위하여 입항·출항 순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유류의 유출이나 수사에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항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17. 9. 19.]

제10조의3 삭제 <2009. 8. 5.>

제11조(도선 이용자의 도선사 선택) 도선 이용자는 해당 도선구의 특정한 도선사를 선택하여 도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8. 5.]

제12조 삭제 <2006. 6. 29.>

제13조 삭제 <2006. 6. 29.>

제14조 삭제 <2006. 6. 29.>

제15조 삭제 <2006. 6. 29.>

제16조 삭제 <2006. 6. 29.>

제17조 삭제 <2006. 6. 29.>

제18조 삭제 <2006. 6. 29.>

제18조의2(도선운영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34조의2에 따른 도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중앙협의회와 도선구별로 설치하는 지방협의회로 구분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9. 19.>

② 중앙협의회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 9. 22., 2013. 3. 23.>

1. 도선 이용자 대표 3명[선주(船主)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과 화주(貨主)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2. 도선사 단체에서 추천하는 도선사 대표 3명
3. 도선 이용자 대표와 도선사 대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해운항만 전문가 2명
4. 도선 이용자 대표와 도선사 대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공정거래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③ 지방협의회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홀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는 같아야 하며, 제4호의 사람은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17. 9. 19.>

1. 관할 도선구의 도선 이용자 대표
 2. 관할 도선구의 도선사 대표
 3. 제1호의 도선 이용자 대표와 제2호의 도선사 대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해운항만 전문가 2명
 4.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항만 운영담당 공무원
- [전문개정 2009. 8. 5.]

제18조의3(협의회의 위원장의 직무 등)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18조의4(협의회의 기능) ① 중앙협의회의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선사 수요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도선료 및 도선선료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협의회 운영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4. 지방협의회의 지도와 지원에 관한 사항
5. 도선 이용자가 특정한 도선사를 선택하여 도선하게 하는 경우 그 선택 요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선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지방협의회회의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도선구의 도선사 수요에 관한 사항
2. 관할 도선구의 도선료 및 도선선료의 산정에 관한 사항
3. 도선사의 이용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선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 8. 5.]

제18조의5(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18조의6(협의회 운영규정) 제18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 위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
2. 협의회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도선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 8. 5.]

제19조(권한의 위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무역항 중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무역항 중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7. 9. 19., 2018. 12. 18., 2024. 6. 25.>

1. 법 제4조에 따른 도선사면허, 등록, 면허증의 발급·재발급 및 개서
- 1의2. 법 제6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갱신
- 1의3. 삭제 <2024. 6. 25.>
- 1의4.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선사에 대한 정년연장
2. 법 제9조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취소, 업무의 정지, 청문, 처분 내용의 통지 및 면허증의 회수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강제 도선의 면제
- 3의2.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도선안전절차의 고시
4. 법 제29조에 따른 보고의 수리와 검사
5.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또는 도선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 9. 19., 2022. 7. 4.>

1.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
 2. 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보수교육
 3. 법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의 실시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법인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7. 9. 19.>
- [전문개정 2009. 8. 5.]
- [제목개정 2017. 9. 19.]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09. 8. 5.]

부칙 <제12338호, 1987. 12. 31.>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폐지법령) 도선안전심의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 ③(다른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7조제6항제13호 및 제1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3353호, 1991. 4. 18.>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15> 생략

1^ 도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에 제1호의2·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제4호는 제외한다)에 의한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명령

5의2.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수리 및 검사

5의3.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업무 종사의 승인

1& 내지1(생략

부칙 <제13823호, 1992. 12. 31.>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도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호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선사협회에 대한 보고의 수리 및 검사를 제외한다.

⑨ 내지 ⑩생략

부칙 <제14447호, 1994. 12. 23.>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9>생략

<180>도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20조제4항중 “교통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81>내지 <205>생략

부칙 <제14800호, 1995. 11.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35호, 1996. 8. 8.>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2>생략

<113>도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 제8조제3항, 제9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8조, 제18조의2제2항, 제18조의6제1항 및 제19조중 “해운항만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본문중 “해운항만청차장”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본문·제1호 및 제17조중 “해운항만청”을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6조 및 제20조제4항중 “건설교통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14>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5379호, 1997. 5. 24.>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2@ 생략

2# 도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3항, 제19조 및 제20조제1항·제2항·제3항중 “지방해운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2\$ 내지3#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15444호,1997. 7.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72호,1999. 3.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96호,1999. 6.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41호,1999. 8. 23.>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도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제1호중 “해난심판법”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로 한다.

④내지 ⑬생략

부칙 <제17784호,2002. 11.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12호,2004. 3. 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75호,2005. 12.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13호, 2006. 6. 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82> 생략

<83> 도선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양수산부의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인

<84> 내지 <241> 생략

부칙 <제19577호, 2006. 6. 29.>

①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정년연장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2조의2 및 제1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20544호, 2008. 1. 1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도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시험과목란의 제1호 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④ 부터 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0722호, 2008. 2. 29.>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 까지 생략

3(도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2항제2호,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전단, 제8조 제4항, 제9조, 제10조의3제1호, 제10조의3제1호 후단 및 전단·제2호,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전단, 제10조의3제1호 전단·제2호 및 제20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단서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18조의2제3항제4호 중 “지방해양수산청”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4)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1666호, 2009. 8. 5.>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제3항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57호, 2011. 9.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선운영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임기가 도래하는 해운항만 전문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443호, 2013. 3. 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1>까지 생략

<112> 도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2항제2호,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4항·제6항, 제8조제3항·제4항, 제9조,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13>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8334호,2017. 9. 19.>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89호,2018. 12. 18.>

이 영은 201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60호,2022. 7.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9조의 개정규정: 2022년 7월 5일
2. 별표 1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3. 별표 2 비고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의 과목 및 배점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고하는 도선수습생 전형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합격자 선발범위 및 승무경력 가산점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 및 별표 2(비고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도선수습생 전형시험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비고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고하는 도선수습생 전형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1급 도선사 경력이 1년 미만인 도선사 및 4급 도선사의 도선 대상 선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1급 도선사로서 경력이 1년 미만인 도선사와 4급인 도선사가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에 관하여는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2월 28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152호,2024. 1. 16.>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시험과목란 제1호 중 “ 「해사안전법」 ”을 “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 ”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4153호,2024. 1. 16.>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도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1호나목 단서 중 “ 「해사안전법」 ”을 “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4호 ”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34605호,2024. 6.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선수습생 전형시험 과목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의 과목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도선법 시행령 [별표1] <개정 2024. 6. 25.>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의 과목 및 배점비율(제7조제3항 관련)

| 구분 | 시험과목 | 배점비율
(단위: %) |
|---------|--|-----------------|
| 필기 및 면접 | 1. 법규: 「도선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협약」) | 30 |
| | 2. 선박운용: 선박조종 이론, 항해장비 및 항행 보조장치, 추진 및 조타시스템, 선체운동역학 및 선박 상호작용, 예선(曳船) 운용방법 및 예선 성능의 제한, 조위(潮位)정보시스템, 지문(地文)항해(항로표지 포함), 선박 복원성, 해양기상, 비상조치 및 손상제어, 수색 및 구조(해상통신 포함) | 30 |
| | 3. 해상교통관리: 선박교통관제, 지능형 해상교통서비스, 해상교통안전진단, 해사정보의 이용과 통신 | 15 |
| | 4. 영어: IMO표준해사통신영어, 해사영어, 일반영어 | 25 |
| | 계 | 100 |

■ 도선법 시행령 [별표1] <개정 2022. 7. 4.>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의 과목 및 배점비율(제7조제3항 관련)

| 구분 | 시험과목 | 배점비율
(단위: %) |
|---------|--|-----------------|
| 필기 및 면접 | 1. 법규: 「도선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협약」) | 30 |
| | 2. 선박운용: 선박조종 이론, 항해장비 및 항행 보조장치, 추진 및 조타시스템, 선체운동역학 및 선박 상호작용, 예선(曳船) 운용방법 및 예선 성능의 제한, 조위(潮位)정보시스템, 지문(地文)항해(항로표지 포함), 선박 복원성, 해양기상, 비상조치 및 손상제어, 수색 및 구조(해상통신 포함) | 30 |
| | 3. 해상교통관리: 선박교통관제, 지능형 해상교통서비스, 해상교통안전진단, 해사정보의 이용과 통신 | 15 |
| | 4. 영어: IMO표준해사통신영어, 해사영어, 일반영어 | 25 |
| | 계 | 100 |

■ 도선법 시행령 [별표2] <개정 2022. 7. 4.>

승무경력 가산점(제7조제4항 관련)

| 승무경력 | 가산점
(필기시험의 총점을 100점으로 할 경우) |
|-----------------|--------------------------------|
| 1. 6년 이상 7년 미만 | 1점 |
| 2. 7년 이상 8년 미만 | 2점 |
| 3. 8년 이상 9년 미만 | 3점 |
| 4. 9년 이상 10년 미만 | 4점 |
| 5. 10년 이상 | 5점 |

비고

총톤수 10만톤 이상인 선박에 선장으로 2년 이상 승선한 경우에는 2점의 승무경력 가산점을 추가로 부여한다.

■ 도선법 시행령 [별표2] <개정 2022. 7. 4.>

승무경력 가산점(제7조제4항 관련)

| 승무경력 | 가산점
(필기시험의 총점을 100점으로 할 경우) |
|-----------------|--------------------------------|
| 1. 6년 이상 7년 미만 | 1점 |
| 2. 7년 이상 8년 미만 | 2점 |
| 3. 8년 이상 9년 미만 | 3점 |
| 4. 9년 이상 10년 미만 | 4점 |
| 5. 10년 이상 | 5점 |

비고

총톤수 10만톤 이상인 선박에 선장으로 2년 이상 승선한 경우에는 2점의 승무경력 가산점을 추가로 부여한다.

■ 도선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09.8.5>

도선사의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제8조제2항 관련)

| 구분 | 시험과목 | 배점비율
(단위: %) |
|----|--|-----------------|
| 면접 | 1. 항만 정보: 도선구의 수로(水路), 항로표지, 정박
묘지, 부두시설 등에 관한 사항 | 25 |
| | 2. 도선 여건: 도선에 관련된 기상, 해상 및 조류
(潮流)등에 관한 사항 | 25 |
| 실기 | 선박 운용술: 선박 조종술, 선체운동역학, 예선(曳
船)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 50 |
| 계 | | 100 |

■ 도선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7. 9. 1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가.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도선사가 면허증의 재발급 또는 개서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41조제1항제1호 | 100만원 |
| 나.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선사가 면허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통지받고 30일 이내에 도선사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1조제1항제2호 | 100만원 |
| 다.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 | 법 제41조제1항제3호 | 200만원 |

| | | |
|--|----------------|-------|
| 장이 해당 선박의 제원 등 도선에 필요한 자료를 도선사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1조제1항제3호의2 | 200만원 |
| 라.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선사가 도선할 선박의 선장에게 도선계획을 제공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경우 | | |
| 마.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장이 도선사를 승선·하선 구역에서 승선·하선시키지 않은 경우 또는 도선사가 승선·하선 구역에서 승선·하선시키려는 선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1조제1항제4호 | 300만원 |
| 바.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도선사가 도선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도선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 법 제41조제1항제5호 | 200만원 |
| 사. 선장이 법 제23조에 따른 다른 도선구에 배치된 도선사나 도선수습생의 승선을 거부한 경우 | 법 제41조제1항제6호 | 200만원 |
| 아.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장이 승선·하선 설비 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1조제1항제7호 | 200만원 |
| 자.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선선의 선장이 도선기를 달지 않은 경우 | 법 제41조제1항제7호의2 | 100만원 |
| 차.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선사가 도선선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도선선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 법 제41조제1항제8호 | 300만원 |
| 카. 도선사 또는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41조제1항제9호 | 100만원 |



도선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13.] [해양수산부령 제807호, 2026. 7. 13.,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 051 - 773 - 5772, 577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선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8. 7.]

제2조(도선사면허의 신청) 「도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도선사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6. 30.>

1.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1부
2.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의 반명함판(3센티미터 × 4센티미터)] 3장
3. 신청 당시의 도선사면허증(도선사면허의 등급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7. 9. 21.]

제3조(도선사면허 원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도선사면허 원부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 9. 21.>

[전문개정 2009. 8. 7.]

제4조(도선사면허증의 발급) 제2조에 따라 도선사면허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신청자가 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요건 및 「도선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조의3 각 호에 따른 등급별 경력기준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도선사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9. 21.]

제5조(면허증의 재발급 및 개서) ①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도선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선사면허증 재발급(개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7. 5., 2021. 6. 30.>

1. 도선사면허증(도선사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 도선사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위를 적은 서류(도선사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2장

②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별지 제4호서식의 도선사면허증 재발급(개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5.>

1. 도선사면허증
 2. 변경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전문개정 2009. 8. 7.]

제6조 삭제 <1991. 1. 11.>

제7조(실무수습) ① 법 제5조제2호에 따른 도선수습생의 실무수습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수습생이 실무수습 기간 내에 제2항에 따른 승선 횟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실무수습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② 도선수습생은 제1항의 실무수습 기간 중에 제19조에 따른 도선구간(실무수습 기간 중에 선박 입항·출항 횟수가 10회 미만인 도선구간은 제외한다)별로 4회 이상 포함하여 200회 이상 승선하여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도선구의 선박 입항·출항 실적이 적은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회의 범위에서 도선구간별 승선 횟수를 포함한 승선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무수습을 마친 도선수습생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무수습 완료 증명서를 발급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이하 “도선사후보자”라 한다)을 별지 제7호서식의 도선사후보자 명부에 승무경력 가산점, 필기점수 및 면접점수를 합산하여 총득점이 높은 순서에 따라 도선구별로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4.>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해당 도선구에서 실무수습을 받은 도선사후보자로 하여금 도선사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순서에 따라 도선사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도선사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연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연도순으로 응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4.>

[전문개정 2009. 8. 7.]

제7조의2 삭제 <2017. 9. 21.>

제8조(도선사면허의 갱신) 법 제6조의2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도선사면허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 당시의 도선사면허증
2.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도선사면허의 갱신을 신청하기 전 2년 이내에 받은 교육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3. 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정기 신체검사의 결과에 관한 서류

[본조신설 2017. 9. 21.]

제9조(교육의 실시 등) ① 법 제6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교육 및 보수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28.>

1. 도선 관련 법규에 관한 교육

1의2. 도선사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

2. 해양사고의 분석에 관한 교육

3. 선교(船橋)자원관리에 관한 교육

4. 선박운용술 및 항로표지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도선 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의 기간은 21시간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은 7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매년 1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과목

3. 교육 대상자 선발계획

4. 평가방법

5. 교재편찬계획

6. 그 밖에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7. 9. 21.]

제9조의2 삭제 <2024. 6. 28.>

제9조의3 삭제 <2024. 6. 28.>

제9조의4 삭제 <2024. 6. 28.>

제9조의5(도선사의 정년연장)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도선사”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도선사를 말한다. <신설 2024. 6. 28.>

1.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필수도선사로서의 경력이 3년 이상인 도선사(같은 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되어 있는 도선사로서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3년 미

만인 도선사를 포함한다)

2. 도선 시 승하선 안전 및 체력·건강관리에 관한 교육훈련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7시간 이상 이수한 도선사. 이 경우 해당 교육훈련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도선사 정년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이수한 것으로 한정한다.

3.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체력 인증의 체력 항목 중 3분의 2 이상의 항목(근력을 측정하는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에서 2등급 이상을 받은 도선사. 이 경우 해당 체력 인증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도선사 정년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②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년의 연장을 받으려는 도선사는 정년이 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도선사 정년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6. 28.>

1.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③ 제2항에 따른 정년연장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도선사의 정년이 되기 전까지 정년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4. 6. 28.>

[본조신설 2018. 12. 19.]

[제목개정 2024. 6. 28.]

제9조의6 삭제 <2024. 6. 28.>

제10조(신체검사)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는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본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9. 21.]

제11조(행정처분의 통지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의 도선사면허 취소(업무정지) 통지서로 지체 없이 처분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도선사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 8. 7.]

제12조 삭제 <1991. 1. 11.>

제13조 삭제 <1999. 5. 13.>

제14조(응시원서) ① 법 제15조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및 도선사 시험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9. 22.>

②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1. 9. 22., 2012. 6. 11., 2023. 2. 16.>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자 본인의 사고나 질병, 직계가족의 사망, 응시자 본인이 승선하는 선박의 항해 일정과 시험일자의 중복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5.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원서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80
- ③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시험의 시행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1. 9. 22.>
- [전문개정 2009. 8. 7.]

제15조 삭제 <1999. 5. 13.>

제16조 삭제 <1999. 5. 13.>

제17조(도선구) 법 제17조에 따른 도선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9. 8. 7.]

제17조의2(도선사의 승선·하선 구역)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선 요청을 한 선박의 선장이 도선사를 승선 또는 하선시켜야 하는 승선·하선 구역(기상특보 또는 이에 준하는 기상악화 시 도선사의 승선·하선 구역을 포함한다)은 제19조의 도선구간별로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7. 7. 5.]

제18조(강제 도선구 및 강제 도선의 면제)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의 도선(이하 “강제 도선”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도선구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강제 도선을 면제받을 수 있는 선장 및 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인천항 및 경인항의 갑문을 통과하는 선박과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른 위험물 중 화약류, 고압가스, 독물, 인화성 액체류 또는 방사성물질(이하 “위험물”이라 한다)이나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름(이하 “기름”이라 한다)을 실은 총톤수[분리평형수탱크(Segregated Ballast Tank)를 설치한 선박의 경우 분리평형수탱크의 용적톤수를 뺀 총톤수를 말한다] 6천톤 이상의 선박[해당 위험물이나 기름을 산적(散積)하여 운송하는 선박으로 한정한다]은 강제 도선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 4. 7., 2011. 9. 22., 2024. 6. 28.>

1. 선장이 강제 도선을 면제받으려는 선박의 총톤수를 기준으로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크거나 작은 선박에 승선하여 동일한 도선구(동일한 도선구 내에 항로여건 등 입항·출항 환경이 서로 다른 구역이 있는 경우 별표 3의 도선구별 수역을 기준으로 한다)에 입항하거나 출항하여 강제 도선을 받은 횟수가 강제 도선의 면제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4회 이상

또는 3년 이내에 9회 이상(위험물 또는 기름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은 1년 이내에 8회 이상 또는 3년 이내에 18회 이상)인 해당 선장과 강제 도선을 면제받으려는 해당 선박. 이 경우 강제 도선의 면제대상 선박의 총톤수는 3만톤 미만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라 강제 도선을 면제받은 선장이 강제 도선을 면제받은 해당 선박의 총톤수보다 작거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큰 선박(이하 “유사선박”이라 한다)에 옮겨 승선하여 강제 도선을 면제받은 동일한 도선구에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경우 해당 선장과 해당 유사선박. 이 경우 강제 도선의 면제대상 선박의 총톤수는 3만톤 미만으로 한다.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강제 도선을 면제받은 선장이 해당 선박 또는 해당 유사선박에서 하선하여 3개월 이상이 지난 후 다시 그 선박 또는 그 유사선박에 승선하여 해당 도선구에 입항 또는 출항하려는 경우에는 강제 도선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선박 또는 해당 유사선박으로부터 하선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강제 도선 면제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2회 이상 강제 도선을 받은 경우에는 강제 도선을 면제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강제 도선을 면제받은 선장이 해당 선박 또는 해당 유사선박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1년 이내에 다시 해당 도선구에 입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 도선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강제도선 면제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2회 이상 강제 도선을 받은 경우에는 강제 도선을 면제한다.

⑤ 법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선소에서 건조·수리한 선박을 시운전하는 사람(이하 “시운전 운항관리자”라 한다)이 강제 도선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도선구에 입항 또는 출항하여 강제 도선을 받은 횟수가 강제 도선 면제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6회 이상이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강제 도선을 면제받은 시운전 운항관리자가 연속하여 1년 이상 건조·수리한 선박을 시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 도선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강제 도선 면제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2회 이상 강제 도선을 받은 경우에는 강제 도선을 면제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요건에 해당되어 강제 도선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서식의 강제 도선 면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경력증명서(조선소에 근무하는 시운전 운항관리자만 해당하며, 해당 조선소에서 발급한 것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이하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라 한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항·출항 사실의 기재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7. 7. 5., 2020. 7. 30.>

⑧ 제7항에 따라 강제 도선의 면제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실을 확인한 후 도선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하여도 안전하게 입항 또는 출항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제 도선을 면제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강제 도선 면제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5.>

⑨ 법 제20조제2항제2호의 항해사 자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승무자격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13. 3. 24.>

[전문개정 2009. 8. 7.]

제19조(도선구간) 법 제21조에 따른 도선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도선구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4.>

[전문개정 2009. 8. 7.]

제20조(도선료 등의 신고) 도선사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선료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도선선료를 신고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도선료(도선선료)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1. 도선료와 도선선료의 요율 및 적용방법
2. 도선운영협의회의 협의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류(도선사와 도선 이용자가 계약으로 도선료 또는 도선선료를 정한 경우에는 도선이용 계약서로 이를 갈음한다)
3. 변경사항 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 8. 7.]

제21조 삭제 <1996. 5. 13.>

제22조(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도선사를 다른 도선구에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배치할 도선구의 명칭과 그 사유를 적은 동의요청서를 해당 도선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요청서를 받은 도선사는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동의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함께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4.>

[전문개정 2009. 8. 7.]

제23조(도선훈련) ①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도선훈련 기간은 3개월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가 3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승선 횟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도선훈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2017. 9. 21.>

② 도선사는 제1항에 따른 도선훈련 기간 동안 100회 이상 승선하여 도선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도선구의 선박 입항·출항 실적이 적은 경우에는 50회의 범위에서 승선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③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선훈련을 마친 도선사에게 종전의 도선사면허의 등급과 동일한 등급의 도선사면허증을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1.>

[전문개정 2009. 8. 7.]

제24조(도선기의 형식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선선에 달아야 하는 도선기의 형식은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국제신호기류(국제신호깃발) 중

에이치 기류(H 깃발)에 따른다. <개정 2021. 6. 30.>

② 도선선의 선장은 오염되었거나 헐어 못 쓰게 된 도선기를 계양해서는 아니 된다.

③ 도선선의 등화(燈火)、형상물 및 도선 신호방법 등은 「1972년 국제 해상충돌 예방규칙 협약」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8. 7.]

제25조(도선선의 의장)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도선선의 의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0. 24.>

1. 선체의 외부는 흰색 또는 귤(Orange)색으로 하여야 한다.

2. 선측에 영문으로 “PILOT”라는 표지를 검은색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8. 7.]

제26조 삭제 <1996. 5. 13.>

제27조 삭제 <2009. 8. 7.>

제28조(보 고) ①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 및 선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보고 일시·보고방법 및 보고할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구두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17. 7. 5.>

②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도선사 사무소, 그 밖의 사업장 또는 도선선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검사 일시·검사장소·검사목적 및 검사공무원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7. 5.>

③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8. 7.]

제29조 삭제 <1999. 5. 13.>

제30조(도선약관의 기재사항)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선약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선의 신청·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도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

3. 도선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4. 도선료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 제11조에 따른 도선이용자의 도선사 선택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 8. 7.]

제31조 삭제 <1999. 5. 13.>

제32조(수수료) ① 법 제38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영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라 한다) 등에 위탁된 업무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내야 한다.<개정 2012. 6. 11., 2017. 7. 5., 2023. 2. 16.>

③ 해양수산부장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은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4., 2017. 7. 5., 2023. 2. 16.>

[전문개정 2009. 8. 7.]

제33조 삭제 <2026. 7. 13.>

부칙 <제877호,1988. 3.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서식 : 생 략

부칙 <제887호,1988. 8. 17.>

이 규칙은 1988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3호,1991. 1.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8호,1993. 2. 2.>

이 규칙은 1993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호,1996. 5. 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선료 및 도선선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19조·제20조·제21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료·할증도선료·도선대기료·도선취소료 및 도선선료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마칠 때까지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호, 1997. 11.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호, 1999. 5. 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선사면허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또는 재교부된 도선사면허증은 별지 제3호서식 1쪽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하여 교부 또는 재교부된 도선사면허증으로 본다.

부칙 <제133호, 1999. 8. 24.>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도선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중 “해난사고”를 “해양사고”로 한다.

④내지 ⑮생략

부칙 <제240호, 2002. 11. 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목포항 도선구에서의 강제도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라 강제도선을 받아야 하는 도선구로 지정된 목포항 도선구의 수역을 입·출항한 횟수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강제도선의 면제여부의 결정을 위한 입·출항 횟수에 포함한다.

부칙 <제263호, 2003.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호, 2004. 8. 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항질서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호, 2005. 12.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호, 2006. 6. 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선수습생의 실무수습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실무수습을 받기 위하여 도선구에 배치되는 도선수습생부터 적용한다.

③(정년연장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401호, 2008. 1. 18.>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호 ”를 “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5호 ”로 한다.

⑤ 부터 ⑦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4호, 2008. 3. 14.>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호, 2009. 8.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조, 제5조, 제17조의 2, 제18조, 제28조 및 제32조의 개정규정 중 시·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사항과 제19조의 도선구간에 관한 사항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운전 운항관리자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강제도선 면제를 받은 시운전 운항관리자는 제18조제9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강제도선을 면제한다.

부칙 <제300호, 2010. 10. 1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비고 제1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를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49호, 2011. 4. 7.>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4호, 2011. 9.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3호, 2012. 6. 11.> (행정처리기간 단축 및 수수료 합리화 등을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선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도선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및 도선사 시험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도선법」에 따른 도선사 면허, 도선사면허증 재발급(개서), 도선사 정년연장의 신청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부칙 <제1호, 2013. 3. 24.>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9조,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32조제3항, 별지 제9호 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서명란 및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9항 및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1쪽의 대한민국 도선사면허증 중 도안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48호, 2013. 10.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작성·제출하거나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3호,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호, 2014. 6.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호, 2014. 12. 31.> (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호, 2016. 5.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호, 2017. 1. 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26호, 2017. 3. 1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6호, 2017. 7.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호, 2017. 9. 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도선사면허증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률 제14729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도선사에게 같은 항의 표의 구분에 따라 2017년 10월 31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른 새로운 도선사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률 제14729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도선사에게 종전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도선사면허증은 2017년 10월 31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도선사면허증으로 본다.

제4조 (도선사면허의 갱신 교육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도선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도선 관련 교육(2013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집합교육으로서 21시간 이상 실시된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도선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실시한 도선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발급받은 교육 관련 증명서류는 2019년 9월 21일까지 제8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류로 본다.

부칙 <제294호, 2018. 12. 19.>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3호, 2019. 8. 14.>

이 규칙은 2019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2호, 2020. 4. 6.>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0호, 2020. 7. 30.> (항만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항 단서 중 “ 「항만법」 제2조제15호 ” 를 “ 「항만법」 제2조제8호 ” 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474호, 2021. 3. 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II. 개별기준 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86호, 2021. 6. 3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2호, 2023. 2.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 및 응시원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제4호, 제32조제2항·제3항, 별표 6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및 도선사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52호, 2024. 2. 5.>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II. 개별기준 제8호 중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II. 개별기준 제9호 중 “「해사안전법」 제41조의2제2호”를 “「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제2호”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676호, 2024. 6.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필수도선사의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의5제2항에 따라 정년이 연장된 국가필수도선사의 정년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07호, 2026. 7. 13.>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
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도선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6. 30.>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제10조제1항 관련)

| 검 사 항 목 | 합 격 기 준 |
|-----------------------------|---|
| 1. 시력 | - 만국시력표로부터 5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두 눈 모두 0.4 이상을 분명히 볼 수 있을 것(교정시력을 포함한다) |
| 2. 청력 | -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데시벨을 넘지 않을 것 |
| 3. 색맹 및
안질환 여부 | - 홍녹색맹 또는 청황색맹이 아닐 것
- 업무수행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안질환이 없을 것 |
| 4. 일반 | - 합병증을 동반하는 중증의 당뇨병이 없을 것
- 중대한 내분비(內分泌)장애 또는 대사(代謝)장애가 없을 것 |
| 5. 호흡기계통 | - 폐 또는 흉부의 수술로 인하여 도선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후유증이 없을 것 |
| 6. 순환기계통 | - 심근장애, 관동맥장애 또는 이들의 증후가 없을 것 |
| 7. 소화기계통 | - 소화기계통이나 복막에 중대한 기능장애 또는 질환이 없을 것
- 직장 또는 항문부에 중대한 질환이 없을 것 |
| 8. 혈액 및 조혈
장 기 (造 血 臟 器) | - 고도의 빈혈이 없을 것
- 혈액 또는 조혈장기의 계통적 질환이 없을 것
- 출혈성 경향을 갖는 질환이 없을 것 |
| 9. 정신 및 신경
계통 | - 중대한 머리외상의 병력 또는 머리외상 후유증이 없을 것
- 중대한 정신장애의 병력이 없을 것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인한 정신 또는 행동 장애가 없을 것
- 알코올 관련 장애가 없을 것 |
| 10. 운동기능 | - 모든 관절의 움직임이 자유로울 것
- 손가락, 손, 팔뚝 또는 신체 각부의 부분적 또는 전체적인 결손이 없을 것
- 팔다리에 도선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운동기능의 장애가 없을 것 |
| 11. 이비인후계통 | - 평형기능장애가 없을 것
- 비공(鼻孔)·부비강(副鼻腔) 또는 인후(咽頭)·후두(喉頭)에 중대한 질환이 없을 것
- 비공의 통기를 심히 방지하는 비중격(鼻中隔)의 완막(宛膜)이 없을 것
- 구개편도(口蓋扁桃)의 심한 비대 또는 만성염증이나 측성인두염이 없을 것 |
| 12. 종합 | - 업무의 수행에 영향이 있을 중질환 또는 신체장애(결핵성질환, 신장질환, 뇌전증, 정신질환, 전염성질환, 간장질환, 신경장애, 언어장애, 기형이나 그 밖의 현저한 질병 또는 신체장애를 말한다)가 없을 것 |

비고: 제3호의 검사항목 중 색맹검사는 최초 신체검사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도선사 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제2항 관련)**I.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제2호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4. 처분권자는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도선업무를 모범적으로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라.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법 제9조제1항제8호의 경우로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제결로써 같은 법 제6조에서 정한 면허의 취소, 업무정지 또는 견책의 징계를 하

고,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조사관이 그 재결을 집행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안전심판에 계류 중인 해양사고에 관하여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4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도선업무를 중지하게 할 수 있다.

6. 3차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 다시 4차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한다.

II. 개별기준

| 위 반 사 항 | 근거법령 | 행 정 처 분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 | 법 제9조제1항 제1호 | 면허취소 | | |
| 2.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면허의 등급별로 도선할 수 있는 선박 외의 선박을 도선한 경우 | 법 제9조제1항 제2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면허취소 |
| 3. 법 제6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9조제1항 제3호 | 면허취소 | | |
|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정기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및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9조제1항 제4호 및 제5호 | 업무정지 (신체검사 적합결과 제출 시까지) | | |
| 5.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 요청을 거절한 경우 | 법 제9조제1항 제6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6. 법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차별 도선을 한 경우 | 법 제9조제1항 제7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7. 업무정지기간에 도선을 한 경우 | 법 제9조제1항 제9호 | 업무정지 6개월 | 면허취소 | |
| 8.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선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음주 | 가.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다. 음주측정 요 | 업무정지 6개월 | 면허취소 | |
| | | 면허취소 | | |
| | | 업무정지 | 면허취소 | |

|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 6개월 | | |
|--|-----------------|------------------|----------|--|--|
| 9. 「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제
2호를 위반하여 약물·환각물
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
으로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도선을 한 경우 | | 법 제9조제1항
제11호 | 면허
취소 | | |

■ 도선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3. 2. 16.>

도선구의 명칭과 구역(제17조 관련)

| 도선구의 명칭 | 구역 |
|---------|--|
| 군산항 도선구 |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송석리 서단, 연도 서단, 북위 36도00분11초 동경 126도27분53초, 북위 35도56분11초 동경 126도27분53초, 내초도 산정(해발 59미터)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구역 |
| 대산항 도선구 | 충청남도 안면도 남단으로부터 대화사도 남단, 연도 서단, 마서면 송석리 서단을 연결한 선 안의 구역과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각으로부터 국화도 동단, 입파도 동북단, 학산서, 말륙도, 풍도 남단, 안도 남단, 북위 36도51분47초 동경 126도07분03초를 거쳐 정자두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구역 |
| 동해항 도선구 |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옥계항 해상구역 북서단(북위37도37분35초 동경129도03분08초 및 북위37도38분10초 동경 129도04분43초), 옥계항 해상구역 북동단(북위37도38분10초 동경129도05분22초), 북호항 해상구역 북동단(북위37도33분22초 동경129도08분12초), 동해항 해상구역 북동단(북위37도31분10초 동경129도10분22초), 삼척항 해상구역 북동단(북위37도26분15초 동경129도12분07초), 삼척항 해상구역 남동단(북위37도25분50초 동경129도12분07초) 및 삼척항 해상구역 남서단(북위37도25분44초 동경129도11분37초)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구역, 속초시 북동방(북위38도12분48초 동경128도36분01초)으로부터 조도 동단을 거쳐 조도 남단과 북위38도11분35초 동경128도36분07초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구역, 호산항 비화진 돌출부(북위37도12분42초 동경129도20분52초)로부터 북위37도12분42초 동경129도22분36초, 북위37도08분42초 동경129도23분56초 및 고포측 돌출부(북위37도08분42초 동경129도21분53초)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구역과 강릉안인화력발전소 해상구역 북동단(북위37도45분02.89초 동경128도58분18.35초)으로부터 북위37도46분14.90초 동경129도00분07.15초, 북위37도45분12.94초 동경129도01분38.99초, 북위37도44분01.21초 동경129도00분22.21초, 북위37도44분15.71초 동경128도59분18.37초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구역 |
| 마산항 도선구 | 진해시 명동 신명 남단을 기점으로 하여 우도 남동단, 연도 남서단, 말박도 서단, 양지암취 등대, 서이말 등대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구역, 목섬, 씨앗섬, 신수도북단, 신수도남단, 제7도선점(북위 34도52분07초 동경 128도05분15초), 율포말까지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구역 및 비진도 설품단으로부터 오곡도 남단, 연대도 남단까지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구역 |

| | |
|---------|---|
| 목포항 도선구 | 목포시 산정동 목도 돌출부 남서단, 정주도 남단, 구례도 남단, 장좌도 북단, 불무기도, 가사도, 불도, 각홀도, 진도 서북단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과 완도읍 대구도로부터 달해도 서단과 신지도 서북각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 |
| 부산항 도선구 | 동생말 끝단과 용호부두 방파제 끝단 및 광안대교 램프 끝단을 직선으로 이은 선 안의 수역, 용호동 송두말부터 오륙도 등대, 생도, 영도 등대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 감말부터 두도등대, 자담말 끝단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 다대포 자담말 서편 끝단, 동편등대부터 방파제 및 서편등대 끝단과 송부 육상 끝단을 연결한 선 안의 수역 및 진해시 명동 신명 남단을 기점으로 하여 우도 남동단, 연도 남서단, 가덕도 감수서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 |
| 여수항 도선구 | 대도로부터 진서로 그은 선과 대도로부터 남해도 평산갑(북위 34도44분41초 동경 127도50분12초) 외난초도 서단(북위 34도54분50초 동경 127도50분12초),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남단(북위 34도56분25초 동경 127도47분30초)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과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남단(북위 34도56분25초 동경 127도47분30초), 외난초도 서단(북위 34도54분50초 동경 127도48분57초), 천석산 서남 돌단(북위 34도57분01초 동경 127도50분45초)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 |
| 울산항 도선구 | 동대산 삼각점(해발 116미터)에서 남방 173도 1,730미터 지점(북위 35도28분40초 동경 129도24분53초)과 북위 35도27분59초 동경 129도23분59초, 북위 35도22분21초 동경 129도26분10초와 북위 35도22분42초 동경 129도22분48초 지점(북위 35도25분05초 동경 129도24분51초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경 5,445미터의 원호(圓弧) 중 북위 35도22분21초 동경 129도26분10초 지점과 북위 35도22분42초 동경 129도22분48초 지점을 연결하는 분호), 북위 35도24분11초 동경 129도22분06초, 북위 35도24분11초 동경 129도21분14초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과 돌안산 최동단(북위 35도30분59초 동경 129도26분47초)을 중심으로 한 반경 2,000미터 원호 안의 수역 |
| 인천항 도선구 | 김포시 양촌면(북위 37도35분36.05초, 동경 126도34분08.57초)으로부터 세어도 북단, 영종도 북단, 덕적도, 울도, 안도, 장안서, 창서, 대부도 남서끝단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과 경인항 서해갑문으로부터 한강갑문까지의 수역 |
| 제주항 도선구 | 제주항 서방파제 동북단을 중심으로 한 반경 3,700미터 원호 안의 수역과 서귀포항 강정지구 남방파제 끝단을 중심으로 한 반경 3,700미터 원호 안의 수역 및 애월항 북방파제 동단을 중심으로 한 반경 3,700미터 원호 안의 수역 |

| | |
|--------------------------------|--|
| 평택·당진항
도선구 | 대부도 남서끝단으로부터 창서, 장안서, 안도, 풍도 남단, 말륙도, 학산서, 입파도 북동단 및 국화도 동단을 거쳐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각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 |
| 포항항 도선구 | 포항시 북구 용한리 동단(북위36도07분15.7초 동경 129도24분58.5초)으로부터 북위36도07분05.8초 동경129도26분22.9초, 북위36도05분53.6초 동경129도27분50.8초, 북위36도05분21.1초 동경129도27분50.8초, 북위36도05분20.7초 동경129도29분44.3초, 북위36도01분23.9초 동경129도29분44.4초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 |
| 비고: 지리학적 경도 및 위도는 세계 측지계에 따른다. | |

■ 도선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3. 2. 16.>

강제 도선을 받아야 하는 도선구(제18조제1항 관련)

1. 인천항 도선구 중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인천항·경인항의 해상 구역과 경인항 서해감문으로부터 한강감문까지의 수역 및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로 지정·고시된 영흥화력발전소 항만시설 수역
2. 대산항 도선구(보령항과 태안항을 포함한다)
3. 군산항 도선구
4. 목포항 도선구 중 장좌도 북단, 외달도 동대, 북위 34도46분12초 동경 126도16분00초, 화원동대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을 포함한 항계 안의 전 수역
5. 여수항 도선구
6. 마산항 도선구. 다만, 비진도 선평단으로부터 오곡도 남단, 연대도 남단까지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은 강제도선 대상에서 제외하고, 삼천포항 수역은 선박규모에 관계없이 남동발전부두, 고성하이발전부두, 신항 4번 및 5번 선석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경우에만 강제도선 대상으로 하며, 총톤수 1천톤 미만의 선박은 다음 각 목의 경우에만 강제도선 대상으로 한다.
 - 가. 마산항 및 진해항 수역은 해당 항만의 검역정박지로부터 항내까지 입항 또는 출항하는 경우
 - 나. 고현항 수역은 사두도 앞 해상으로부터 항내까지 입항 또는 출항하는 경우
 - 다. 옥포항 수역은 검역정박지로부터 항내까지 입항 또는 출항하는 경우
 - 라. 지세포항 수역은 지심도 앞(북위 34도51분11초 동경 128도47분52초)으로부터 항내까지 입항 또는 출항하는 경우
7. 부산항 도선구
8. 울산항 도선구
9. 포항항 도선구. 다만, 총톤수 5천톤 미만의 선박이 강제도선구 밖에서 강제도선구 안에 있는 정박지에 정박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강제도선 대상에서 제외 가능
10. 동해항 도선구
11. 평택·당진항 도선구 중 대부도 남서끝단(북위 37도11분52초 동경 126도32분08초), 입파도선점(북위 37도08분10초 동경 126도29분53초), 학산서(북위 37도07분22초 동경 126도31분48초), 입파도 북동단(북위 37도06분44초 동경 126도32분29초), 국화도 동단(북위 37도03분40초 동경 126도33분37초),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각(북위 37도02분10초 동경 126도33분35초)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

12. 제주항 도선구. 다만, 제주항 도선구 안의 애월항 수역에서는 LNG운반선의 경우에만 강제 도선의 대상으로 한다.

비고

1. 강제 도선 구역 안의 조선소 수역(「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은 수역)은 제외한다.
2. 지리학적 경도·위도는 세계 측지계에 따른다.

■ 도선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설 2009.8.7>

승무자격(제18조제9항 관련)

1.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시운전 운항관리자

| 시운전 선박 | 승 무 자 격 |
|-------------------------|--|
| 가. 총톤수 3만톤 이상 선박 | 1) 7년 이상 경력자로서 3급 항해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2) 5년 이상 7년 미만 경력자로서 2급 항해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3) 5년 미만 경력자로서 1급 항해사 자격 소지자 |
| 나. 총톤수 6천톤 이상 3만톤 미만 선박 | 1) 7년 이상 경력자
2) 5년 이상 7년 미만 경력자로서 3급 항해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3) 5년 미만 경력자로서 2급 항해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
| 다. 총톤수 5백톤 이상 6천톤 미만 선박 | 1) 5년 이상 경력자
2) 5년 미만 경력자로서 3급 항해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

2. 조선소와 일시 계약의 방법으로 선박을 시운전하는 시운전 운항관리자

| 시운전 선박 | 승 무 자 격 |
|---------------------------|-------------------|
| 가. 총톤수 6천톤 이상 선박 | 1급 항해사 |
| 나. 총톤수 3천톤 이상 6천톤 미만 선박 | 2급 항해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
| 다. 총톤수 1천6백톤 이상 3천톤 미만 선박 | 3급 항해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

■ 도선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3. 2. 16.>

수수료(제32조제1항 관련)

| 구분 | 금액 |
|--|---------|
| 1.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이나 도선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
| 가. 도선수습생 전형 필기시험 | 20,000원 |
| 나. 도선수습생 전형 면접시험 | 20,000원 |
| 다. 도선사 시험 | 20,000원 |
| 2. 도선사면허종의 발급·재발급(개서)·갱신을 신청하는 경우 | |
| 가. 도선사의 정년연장을 신청하면서 도선사면허종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10,000원 |
| 나. 그 외의 사유로 발급·재발급(개서)·갱신을 신청하는 경우 | 2,000원 |

■ 도선법 시행규칙 [별표 7] 삭제 <1996.5.13>

■ 도선법 시행규칙 [별표 8] 삭제 <1993.2.2>

■ 도선법 시행규칙 [별표 9] [별표 6]으로 이동 <2009.8.7>

■ 도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6. 30.>

[] 1급

[] 3급

[] 2급

[] 4급

도선사면허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3일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성별) |
| | 주소
<div style="text-align: right;">(전화번호:)</div> | |
| 사진
(3cm x 4cm) | 도선구의 명칭 | |
| | 도선사 시험 합격일 | |
| | 신청 당시의 도선사면허 취득일 | |

「도선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선사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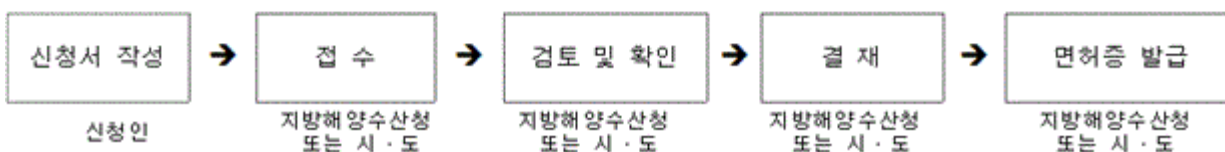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1부
2.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의 반명함판(3센티미터 × 4센티미터)을 말합니다] 3장
3. 신청 당시의 도선사면허증(도선사면허의 등급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2천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
|--------------------------------------|------------|----------|
| <div>사진</div> <div>(3cm x 4cm)</div> | 성명 | 생년월일(성별) |
| | 주소 | |
| | 도선구의 명칭 | 면허증 번호 |
| | 도선사 시험 합격일 | 면허증 발급일 |

[illegible]

국가법령정보센터

(뒷면)

주요 학력 및 경력 사항

| 날짜 | 주요내용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상별 사항

| 날짜 | 주요내용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교육훈련 이수 사항

| 날짜 | 교육과정명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도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6. 28.>

(1쪽)

| |
|---|
| <p>대한민국</p> <p>도선사면허증</p>  <p>PILOT LICENSE</p> <p>REPUBLIC OF KOREA</p> |
|---|

85mm × 125mm [백상지(150g/m²)]

(2쪽)

| | |
|---|------------------------------|
| 1급 도선사면허증 | <p>사진</p> <p>(3cm × 4cm)</p> |
| 면허증번호: | |
| ① 성명 | |
| ② 생년월일 | |
| ③ 주소 | |
| ④ 도선구의 명칭 | |
| ⑤ 유효기간 | |
| <p>위 사람은 「도선법」 제4조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면허증을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p> <p style="text-align: center;">시·도지사</p> | |

| (2쪽) | | (2쪽) | |
|--|------------------|--|--|
| <div style="text-align: center;"> 사진
(3cm×4cm) </div> | 3급 도선사면허증 | | <div style="text-align: center;"> 사진
(3cm×4cm) </div> |
| | 면허증번호: | | |
| | ① 성명 | | |
| | ② 생년월일 | | |
| | ③ 주소 | | |
| | ④ 도선구의 명칭 | | |
| | ⑤ 유효기간 | | |
| 4조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을 발급합니다. | | 위 사람은 「도선법」 제4조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면허증을 발급합니다. | |
| <div style="text-align: center;"> 일 </div> | |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div> | |
| 청장 직인 | | <div style="text-align: center;">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div> 직인 | |

| (2쪽) | | (3쪽) | |
|--|----------------------------------|--|--|
| <div style="text-align: center;"> 사진
(3cm×4cm) </div> | FIRST CLASS PILOT LICENSE | | <div style="text-align: center;"> 사진
(3cm×4cm) </div> |
| | NUMBER OF PILOT LICENSE: | | |
| | NAME | | |
| | BIRTH DATE | | |
| | ADDRESS | | |
| | PILOT DISTRICT | | |
| | EXPIRATION DATE | | |
| 4조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을 발급합니다. | | This is to certify that above person is duly qualified
by Korea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4 of Pilotage Act. | |
| <div style="text-align: center;"> 일 </div> | | <div style="text-align: center;"> Registered _____ day of _____ </div> | |
| 청장 직인 | | <div style="text-align: center;"> Republic of Korea </div> | |
| | | <div style="text-align: center;"> ____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____ Mayor / Governor </div> | |

(3쪽)

| | | |
|--|--|-----------------|
| SECOND CLASS PILOT LICENSE | | 사진
(3cm×4cm) |
| NUMBER OF PILOT LICENSE: | | |
| NAME | | |
| BIRTH DATE | | |
| ADDRESS | | |
| PILOT DISTRICT | | |
| EXPIRATION DATE | | |
| <p>This is to certify that above person is duly qualified by Korea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4 of Pilotage Act.</p> <p>Registered _____ day of _____</p> <p>Republic of Korea</p> <p>_____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p> <p>_____ Mayor / Governor</p> | | |

(3쪽)

| | | |
|--|--|-----------------|
| THIRD CLASS PILOT LICENSE | | 사진
(3cm×4cm) |
| NUMBER OF PILOT LICENSE: | | |
| NAME | | |
| BIRTH DATE | | |
| ADDRESS | | |
| PILOT DISTRICT | | |
| EXPIRATION DATE | | |
| <p>This is to certify that above person is duly qualified by Korea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4 of Pilotage Act.</p> <p>Registered _____ day of _____</p> <p>Republic of Korea</p> <p>_____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p> <p>_____ Mayor / Governor</p> | | |

(3쪽)

| | | |
|--|-------|-----------------|
| FOURTH CLASS PILOT LICENSE | | 사진
(3cm×4cm) |
| NUMBER OF PILOT LICENSE: _____ | | |
| NAME | _____ | |
| BIRTH DATE | _____ | |
| ADDRESS | _____ | |
| PILOT DISTRICT | _____ | |
| EXPIRATION DATE | _____ | |
| <p>This is to certify that above person is duly qualified by Korea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4 of Pilotage Act.</p> <p>Registered _____ day of _____</p> <p>Republic of Korea</p> <p>_____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p> <p>_____ Mayor / Governor</p> | | |

(4쪽부터 9쪽까지)

| 면허증확인란 | | |
|--------|---------|-------|
| 일 자 | 확 인 사 항 | 확 인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6. 30.>

도선사면허증 재발급(개서)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 | | | | |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 3일 | |
| 신청인 | 성명 | | | 생년월일 | | | |
| | 주소 | | | (전화번호 :) | | | |
| 사진
(3cm x 4cm) | 면허증 번호 | | | | | | |
| | 면허증 발급일 | | | | | | |
| | 도선구의 명칭 | | | | | | |
| | 재발급(개서) 사항 | | 변경 전 | | | | |
| | | | 변경 후 | | | | |
| 재발급(개서) 사유 | | | | | | | |

「도선법」 제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도선사면허증의 재발급(개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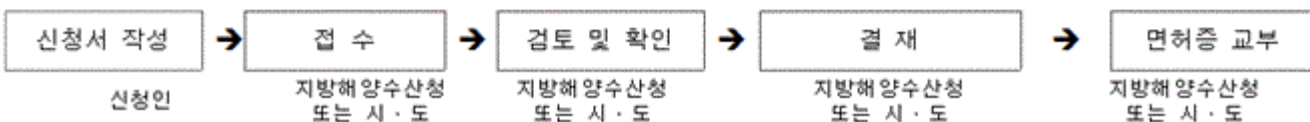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도선사면허증(도선사면허증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개서하는 경우만 해당)
2. 도선사면허증 분실 경위서(도선사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만 해당) 1부
3. 변경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개서의 경우만 해당) 1부
4.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재발급의 경우만 해당) 2장 | 수수료 2천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

처리절차

210mm x 297mm [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실무수습 완료 증명서

| | | |
|---------|-----------------|------|
| 도선 수습생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도선수습 기간 | . . . ~ . . . | |
| 수습 도선구 | | |

도선수습 실적

(단위: 척)

[illegible]

「도선법」 제5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선수습생으로서 실무수습을 마쳤음을 증명합니다.

三〇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 도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2017. 9. 21.>

도선사면허 갱신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 | |
|-------------------|----------|----------|------|----|
|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사진
(3cm x 4cm) | 면허증 번호 | | | |
| | 면허증 발급일 | | | |
| | 도선구의 명칭 | | | |
| | 면허증 유효기간 | | | |

「도선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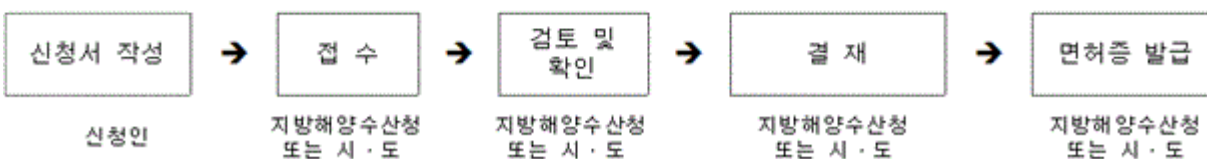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신청 당시의 도선사면허증
2. 「도선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도선사면허의 갱신을 신청하기 전 2년 이내에 받은 교육에 관한 서류를 말합니다)
3. 「도선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도선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도선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정기 신체검사의 결과에 관한 서류 | 수수료 2천 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도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삭제 <2024. 6. 28.>

■ 도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4서식] 삭제 <2024. 6. 28.>

■ 도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6. 28.>

도선사 정년연장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 | | |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30일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
| | 주소
(전화번호 :) | | | | |
| 신청내용 | 도선구의 명칭 | | | | |
| | 면허일자 | | | | |
| | 정년퇴임일자 | | | | |
| | 정년연장 기간 | | 부터 | 까지 (년간) | |
| | 정년연장 사유 | | | | |

「도선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2항 또는 법률 제7788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및 증전의 「도선법」(법률 제7788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조에 따라 도선사의 정년연장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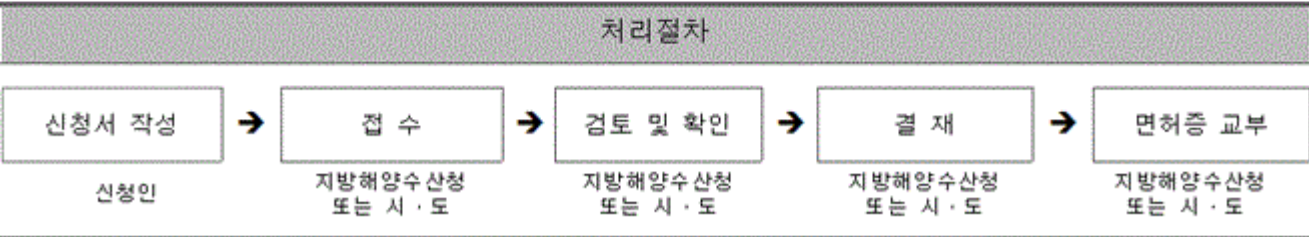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도선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 수수료 10,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도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삭제 <2024. 6. 28.>

도선사후보자 명부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 80g/m²)

■ 도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 7. 5.>

도선사면허 취소(업무정지) 통지서

| | |
|-----------------|---------------|
|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 |
| (전화번호 :) | |
| 도선구의 명칭 | |
| 면허증 번호 | |
| 면허관청 | |
| 최초 면허 취득일 | |
| 최종 면허 갱신일 | |
| 면허 취소일(업무정지 기간) | . . . ~ . . . |
| 면허취소(업무정지) 사유 | |

「도선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선사 면허 취소(업무정지)를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면허취소(업무정지)일부터 30일 이내에 도선사면허증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도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6. 28.>

(앞쪽)

도선수습생 전형(도선사)시험 응시원서

※ 희망(수습) 도선구 란에는 하나의 도선구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성명 | 한글: _____ 한자: _____ | 사진
(3cm x 4cm) | |
| 생년월일(성별) | _____ | | |
| 주소 | (전화번호 : _____) | | |
| 해기사면허증 | 면허등급: _____ | 발급일: _____ | 발급기관: _____ |
| 선장의 직무로 업무정
지를 받은 횟수 | _____ | 금고 이상의 형벌
사형 | _____ |
| 희망(수습) 도선구 | _____ | 필기시험 합격일 | _____ |

「도선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선수습생 전형(도선사)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 | |
|--|---------------|
| 응시번호 |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귀하 |
| 첨부서류 | |
| 1.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승무경력증명서[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급한 승무경력 증명서(출톤수 6천톤 이상인 선박의 선장으로 승무한 모든 승선경력)을 말함]
2. 도선사시험: 없음 | |

----- 절 ----- 취 -----

| | | |
|--------------------------|--------------------|-------------------|
| 응시번호 | 응시표 | 사진
(3cm x 4cm) |
| | 년도 도선수습생 전형(도선사)시험 | |
| 성명: _____
생년월일: _____ | | |
| 년 월 일 | | |
|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직인 | | |

210mm x 297mm [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절 ----- 취 -----

유의사항

1. 응시표를 지니지 않은 사람은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표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사진(원서에 첨부한 것과 같은 사진) 1장을 지참하여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2. 시험장에는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답안 작성에 필요한 필기도구(검정색·파란색 유성펜 또는 만년필)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3. 시험당일에는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 책상의 오른쪽에 응시표와 주민등록증을 놓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시험장에서는 흡연, 이야기를 주고받는 행위, 물품의 대여를 절대 금하며, 일단 입실한 응시자는 해당 시험이 끝날 때까지 임의로 퇴장할 수 없습니다.
5. 부정행위자는 즉시 시험장에서 퇴실 조치되고, 해당 시험은 무효로 처리되며 향후 2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6.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도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7. 7. 5.>

강제 도선 면제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 | | | | |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 1일 | |
| 면제 번호 | | 제 호 | | | | | |
| 선장 | 성명 | | | 생년월일 | | | |
| | 선원수첩
번호 | | | 해기사면허
번호 | | | |
| 선박
제원
(諸元) | 선명 | | | 선박번호 또는
호출부호 | | | |
| | 총톤수 | | | 국적 | | | |
| | 소유자 | | | 용도 | | | |
| 입항
· 출항
사실 | 선명 | | | | | | |
| | 총톤수 | | | | | | |
| | 입항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항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항·출항
횟수 | 회 | | 담당공무원
확인 | (서명 또는 인) | | |
| 「도선법 시행규칙」 제18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강제 도선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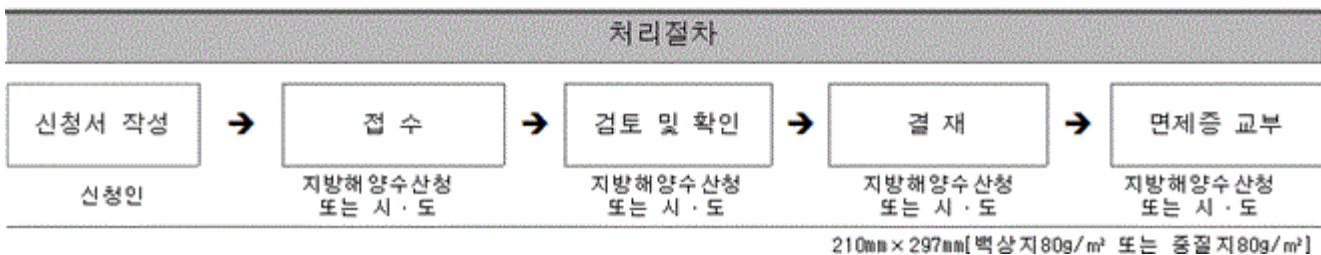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시·도지사 | | | | 「도선법 시행규칙」 제18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강제 도선을 면제합니다.

※ 유효기간:
※ 면제조건: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직인 | | | |

| | | |
|------|--|-----------|
| 첨부서류 | 경력증명서(조선소에 상시 근무하는 시운전 운항관리자만 해당) 1부 | 수수료
없음 |
| 기 타 | 입항·출항 사실이 6회 이상인 경우는 입출·출항 사실을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함 | |



■ 도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7. 1. 2.>

도선료(도선선료)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 | |
|--------------|----------------|------|
| 신고인
(도선사)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신고내용 | 적용 도선구의 명칭 | |
| | 적용 예정일 | |
| | 변경 사유 | |

「도선법」 제21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선료(도선선료)를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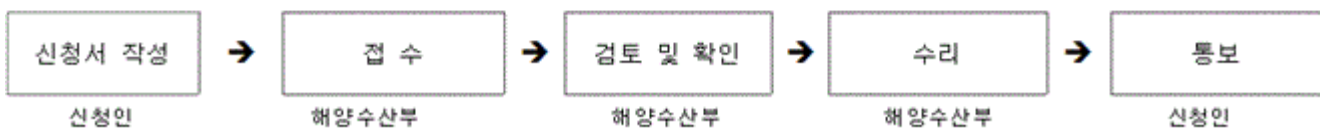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도선료 또는 도선선료의 요율 및 적용방법 1부
2. 도선운영협의회의 협의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류(도선사와 도선이용자가 계약으로 도선료 또는 도선선료를 정한 경우에는 도선이용계약서로 이를 갈음함) 1부
3. 변경사항 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만 해당) 1부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 도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 12호서식] <개정 2017. 7. 5.>

(앞쪽)

| |
|--|
| 제 호 |
| 출입 · 검사 공무원증 |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p>사 진</p> <p>3cm × 4cm</p> <p>(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p> </div> |
| 성 명 |
| 기 관 명 |

55mm × 85mm [보존 용지(1종) 120g/㎡]

(색상: 연하늘색)

(뒤쪽)

| |
|--|
| 출입 · 검사 공무원증 |
| 소속/직급: |
| 성 명: |
| 생년월일: |
| 유효기간: 발행일로부터 1년 |
| <p>위 사람은 「도선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검사 권한을 가진 공무원임을 증명함.</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
| <p>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p> <p>시·도지사</p> |
| <p>1. 검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을 적은 서면을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p> <p>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p> <p>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p> |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1999.5.13>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1999.5.13>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1999.5.13>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은 별지 제12호서식으로 이동 <2009.8.7>]

해양환경관련법규

1. 해양환경관리법
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3.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4.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해양환경관리법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416호, 2026. 2. 27.,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선박규제 - 해사산업기술과) 051 - 773 - 5834, 5835
 해양수산부 (해양오염방제 - 해양환경정책과) 051 - 773 - 5283, 5293
 해양수산부 (총괄, 법령개정사항 - 해양환경정책과) 051 - 773 - 5289, 529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3.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4. 11., 2007. 4. 27., 2007. 12. 21., 2008. 2. 29., 2009. 6. 9., 2009. 12. 29., 2012. 12. 18., 2013. 3. 23., 2014. 1. 21., 2017. 3. 21., 2017. 10. 31., 2022. 10. 18.>

1. “해양환경”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환경을 말한다.
2. “해양오염”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을 말한다.
3. “배출”이라 함은 오염물질 등을 유출(流出)·투기(投棄)하거나 오염물질 등이 누출(漏出)·용출(溶出)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양오염의 감경·방지 또는 제거를 위한 학술목적의 조사·연구의 실시로 인한 유출·투기 또는 누출·용출을 제외한다.
4. “폐기물”이라 함은 해상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되는 물질로서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제5호·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5. “기름”이라 함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원유 및 석유제품(석유가스를 제외한다)과 이들을 함유하고 있는 액체상태의 유성혼합물(이하 “액상유성혼합물”이라 한다) 및 폐유를 말한다.
6.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란 「선박평형수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평형수를 말한다.
7. “유해액체물질”이라 함은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액체물질(기름을 제외한다)과 그 물질이 함유된 혼합 액체물질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포장유해물질”이라 함은 포장된 형태로 선박에 의하여 운송되는 유해물질 중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유해방오도료(有害防汚塗料)”라 함은 생물체의 부착을 제한·방지하기 위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 사용하는 도료(이하 “방오도료”라 한다) 중 유기주석 성분 등 생물체의 파괴작용을 하는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잔류성오염물질(殘留性汚染物質)”이라 함은 해양에 유입되어 생물체에 농축되는 경우 장기간 지속적으로 급성·만성의 독성(毒性) 또는 발암성(發癌性)을 야기하는 화학물질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오염물질”이라 함은 해양에 유입 또는 해양으로 배출되어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기름·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을 말한다.
12. “오존층파괴물질”이라 함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3. “대기오염물질”이란 오존층파괴물질, 휘발성유기화합물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대기오염물질 및 같은 조 제3호의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를 말한다.
14. “배출규제해역”이란 선박운항에 따른 대기오염 및 이로 인한 육상과 해상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으로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특별히 규제하는 조치가 필요한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을 말한다.
15. “휘발성유기화합물”이라 함은 탄화수소류 중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6. “선박”이라 함은 수상(水上) 또는 수중(水中)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 및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고정식·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을 말한다.
17. “해양시설”이라 함은 해역(「항만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항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배치하거나 투입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8. “선저폐수(船底廢水)”라 함은 선박의 밑바닥에 고인 액상유성혼합물을 말한다.
19. “항만관리청”이라 함은 「항만법」 제20조의 관리청, 「어촌·어항법」 제35조의 어항관리청 및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를 말한다.
20. “해역관리청”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해역관리청을 말한다.
21. “선박에너지효율”이란 선박이 화물운송과 관련하여 사용한 에너지량을 이산화탄소 발생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22.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란 선박의 건조 또는 개조 단계에서 사전적으로 계산된 선박의 에너지효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선박이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할 때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제41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

라 계산한 지표를 말한다.

23. “선박에너지효율지수”란 현존하는 선박의 운항단계에서 사전적으로 계산된 선박의 에너지효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선박이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할 때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제41조의5제1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지표를 말한다.

24.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란 사후적으로 계산된 선박의 연간 에너지효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선박이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할 때 배출된 이산화탄소량을 제41조의6제1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매년 계산한 지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해역·수역·구역 및 선박·해양시설 등에서의 해양환경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방사성물질과 관련한 해양환경관리(연구·학술 또는 정책수립 목적 등을 위한 조사는 제외한다) 및 해양오염방지에 대하여는 「원자력안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7. 25., 2016. 12. 27., 2017. 3. 21.>

1.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
2.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3.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4.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해저광구

②제1항 각 호의 해역·수역·구역 밖에서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이하 “대한민국선박”이라 한다)에 의하여 행하여진 해양오염의 방지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③대한민국선박 외의 선박(이하 “외국선박”이라 한다)이 제1항 각 호의 해역·수역·구역 안에서 항해 또는 정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제32조, 제41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41조의4, 제49조부터 제54조까지, 제54조의2,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 제112조 및 제113조의 규정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2. 18., 2020. 3. 24.>

④제44조의 규정에 따른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및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연료유의 품질기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오염물질의 처리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6. 15., 2017. 1. 17.>

⑥선박의 디젤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제협약과의 관계) 해양환경 및 해양오염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기준과 이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다른 때에는 국제협약의 효력을 우선한다. 다만, 이 법의 규정내용이 국제협약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삭제 <2017. 3. 21.>

제6조 삭제 <2017. 3. 21.>

제7조 삭제 <2017. 3. 21.>

제2장 해양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조치

제1절 해양환경 조사 및 정도관리 등 <개정 2017. 3. 21.>

제8조 삭제 <2017. 3. 21.>

제9조(해양환경측정망)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종합조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 측정망을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해양환경을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3. 21.>

②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성한 해양환경측정망을 참고하여 관할 해역에 적합한 해양환경측정망을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 해역의 해양환경측정망을 구성하거나 구성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1. 8.>

제10조(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의 구성·운영 등 해양환경 관련 조사 및 평가에 있어서 그 정확성과 통일성 확보를 위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과 관련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고시된 한국산업표준의 내용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28., 2017. 3. 21.>

제11조(해양환경정보망)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해양환경정보망을 구축하고 국민에게 해양환경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3. 21.>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정보망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2조(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해양환경정보 정도관리를 위하여 해양환경상태를 측정·분석하는

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하 “측정·분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분석능력의 평가, 관련 교육의 실시 및 측정·분석과 관련된 자료의 검증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3. 2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장비 및 기기의 개선·보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2조의2(정도관리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해양환경조사의 기준 및 방법, 취득자료의 처리 및 정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정도관리기준(이하 “정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정도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12조의3(정도관리계획)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환경종합조사 실시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정도관리기준에 적합한 해양환경조사, 취득자료의 처리 및 정보관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도관리기준의 확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기관에 대하여 정도관리계획의 수립 및 필요한 기술 등을 지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정도관리계획 이행의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13조(측정·분석능력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도관리 결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측정·분석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측정·분석기관에 대하여 측정·분석능력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분석능력인증을 받은 측정·분석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정기적인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측정·분석능력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측정·분석능력인증을 받은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측정·분석능력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측정·분석능력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도관리 결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분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그 밖에 측정·분석능력인증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분석능력인증의 신청절차 및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절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등 <개정 2011. 6. 15., 2017. 3. 21.>**제14조 삭제 <2017. 3. 21.>**

제15조(환경관리해역의 지정·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이하 “환경관리해역”이라 한다)을 지정·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 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환경보전해역: 해양환경 및 생태계가 양호한 해역 중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한다)
2. 특별관리해역: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초 지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정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환경관리해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범위를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시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 조사 결과
2. 제39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조사 결과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결과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시행한 해양환경 및 생태계 관련 조사 결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및 해제,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8.]

[종전 제15조는 제15조의2로 이동 <2019. 1. 8.>]

제15조의2(환경관리해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보전해역의 해양환경 상태 및 오염원을 측정·조사한 결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국민의 건강이나 생물의 생육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환경보전해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3. 21., 2019. 1. 8.>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관리해역의 해양환경 상태 및 오염원을 측정·조사한 결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국민의 건강이나 생물의 생육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3. 21., 2019. 1. 8.>

1. 특별관리해역 안에서의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제한

2. 특별관리해역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규제

③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변경이 제한되는 시설 및 제한의 내용, 오염물질의 총량규제를 실시하는 해역범위·규제항목 및 규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9. 1. 8.>

[제목개정 2019. 1. 8.]

[제15조에서 이동 <2019. 1. 8.>]

제16조(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을 구체화하여 특정 해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해역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6. 15., 2013. 3. 23.>

1. 해양환경의 관측에 관한 사항

2. 오염원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해양환경 보전 및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4. 환경관리에 따른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관리해역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개정 2009. 2. 6., 2011. 6. 15.>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 6. 15., 2013. 3. 23.>

④해양수산부장관은 해역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관리단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1. 6. 15., 2013. 3. 23.>

[제목개정 2011. 6. 15.]

제17조(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 8.]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①해역관리청은 오염물질의 유입·확산 또는 퇴적 등으로 인한 해양 오염을 방지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양환경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6. 1., 2013. 3. 23., 2016. 12. 27., 2019. 12. 3.>

1. 오염물질 유입·확산방지시설의 설치

2.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의 수거 및 처리

3. 삭제 <2019. 12. 3.>

4. 그 밖에 해양환경개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조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의 대상 해역 또는 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지사의 관할에 속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 또는 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1., 2013. 3. 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또는 해양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역 또는 구역에서 해양환경의 오염원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오염된 해역 및 오염물질이 배출된 시설물에 대한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6. 1., 2013. 3. 23.>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해양환경의 오염원에 대한 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원인자(이하 “오염원인자”라 한다)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6. 1., 2013. 3. 23., 2017. 3. 21.>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와 관련하여 오염물질 유입·확산방지시설의 설치 방법,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의 수거·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2. 6. 1., 2013. 3. 23., 2016. 12. 27., 2019. 12. 3.>

제3절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제19조(해양환경개선부담금)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12. 3.>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을 하는 자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2.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을 고립시키는 방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해양 지중저장하는 행위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2011. 6. 15.>

1. 전쟁,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 제3자의 고의만으로 발생한 경우. 다만,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해역·수역 밖에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부담금은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오염물질의 배출량에 단위당 부과금액을 곱한 후 오염물질의 종류별 부과계수를 적용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오염물질의 배출량·단위당 부과금액 및 종류별 부과계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6. 15.>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1. 6. 15., 2013. 3. 23.>

⑤해양수산부장관은 부담금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09. 4. 22., 2011. 6. 15., 2013. 3. 23., 2015. 6. 22., 2017. 10. 31.>

⑥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6. 15.>

제20조(부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부담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10. 31.]

제21조(부담금의 용도) 제19조제5항에 따라 기금으로 납입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6. 12. 27.>

1. 해양오염방지 및 해양환경의 복원에 관한 사업
2.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업
3. 친환경적 해양이용사업자 및 연안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4.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에 대한 사업
5. 해양환경 관련 연구개발사업
6. 해양환경의 조사·연구·홍보 및 교육에 관한 지원사업
7. 해양오염에 따른 어업인 피해의 지원 등 수산업지원사업
8.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3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제1절 통칙

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①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2. 21., 2008. 2. 29., 2010. 4. 15., 2013. 3. 23., 2019. 12. 3.>

1.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기름을 배출하는 경우
 - 가. 선박에서 기름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배출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 나. 유조선에서 화물유가 섞인 선박평형수, 화물창의 세정수(洗淨水) 및 선저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배출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 다. 유조선에서 화물창의 선박평형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세정도(洗淨度)에 적합하게 배출할 것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유해액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가. 유해액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전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 나.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유해액체물질의 산적운반(散積運搬)에 이용되는 화물창(선박평형수의 배출을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에서 세정된 선박평형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정화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 ②누구든지 해양시설 또는 해수욕장·하구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이하 “해양공간”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1. 해양시설 및 해양공간(이하 “해양시설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하는 경우
2. 해양시설등에서 발생하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12. 3.>

1.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의 안전확보나 인명구조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2.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의 손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3.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의 오염사고에 있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오염피해를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제22조의2(폐기물의 배출률) ①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에 배출하려는 선박의 소유자(선박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선박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배출률[선박의 흘수(吃水) 및 속력에 따른 시간당 폐기물 배출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준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한 선박의 소유자는 폐기물을 배출한 장소, 배출량 등을 그 선박의 기관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24.>

③ 제1항에 따라 배출률을 승인받아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배출률의 승인절차 및 제2항에 따른 기관일지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24.>

[본조신설 2016. 12. 27.]

제23조 삭제 <2019. 12. 3.>

제24조(해양오염방지활동) ① 삭제 <2019. 12. 3.>

② 해역관리청은 오염방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공간에 대하여 수질 검사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조사·측정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해역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조사·측정활동 등 오염방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 또는 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④ 삭제 <2019. 12. 3.>

제2절 선박에서의 해양오염방지

제25조(폐기물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저장·처리하기 위한 설비(이하 “폐기

물오염방지설비 ”라 한다)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3. 2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폐기물오염방지설비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작동되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6조(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①선박의 소유자는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기름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이하 “기름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해당 선박에 설치하거나 폐유저장을 위한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상선박과 설치기준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8. 20.>

②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의 충돌·좌초 또는 그 밖의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기름의 배출을 방지할 수 있는 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상선박, 선체구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름오염방지설비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작동되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7조(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①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반하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유해액체물질을 그 선박 안에서 저장·처리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유해액체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이하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반하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의 충돌·좌초 그 밖의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유해액체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선박의 화물창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인을 받아 그 선박의 선장에 게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작동되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8조(선박평형수 및 기름의 적재제한) ①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유조선의 화물창 및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연료유탱크에는 선박평형수를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새로이 건조한 선박을 시운전하거나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2. 21., 2008. 2. 29., 2013. 3. 23.>

②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경우 그 선박의 선수(船首)탱크 및 충돌격벽(衝突隔壁)보다 앞쪽에 설치된 탱크에는 기름을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목개정 2007. 12. 21.]

제29조(포장유해물질의 운송) 선박을 이용하여 포장유해물질을 운송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표시 및 적재방법 등의 요건에 적합하게 이를 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30조(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관리) ①선박의 선장(피예인선의 경우에는 선박의 소유자를 말한다)은 그 선박에서 사용하거나 운반·처리하는 폐기물·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록부(이하 “선박오염물질기록부”라 한다)를 그 선박(피예인선의 경우에는 선박의 소유자의 사무실을 말한다) 안에 비치하고 그 사용량·운반량 및 처리량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폐기물기록부 :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총량·처리량 등을 기록하는 장부. 다만,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자가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는 경우에는 동 처리대장으로 갈음한다.
2. 기름기록부 : 선박에서 사용하는 기름의 사용량·처리량을 기록하는 장부.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경우를 제외하며, 유조선의 경우에는 기름의 사용량·처리량 외에 운반량을 추가로 기록하여야 한다.
3. 유해액체물질기록부 : 선박에서 산적하여 운반하는 유해액체물질의 운반량·처리량을 기록하는 장부

②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보존기간은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그 기재사항·보존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30조의2(전자기록부의 관리 등) ① 선박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 정보기록장치나 시스템(이하 “전자기록부”라 한다)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기록부에 기록한 사항은 각 호에 규정된 기록부 또는 기관일지에 기재한 것으로 본다.

1. 제30조에 따른 선박오염물질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2. 제42조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3. 제43조제4항 및 제44조제3항에 따라 기관일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4. 기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사항

② 전자기록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전자기록부의 설비 및 보안사항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전자기록부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선박의 소유자는 제3항에 따른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해당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기록부 검사 신청 절차,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의 발급 절차·기준,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0. 18.]

제31조(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관리 등) ①선박의 소유자는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이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이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검인을 받은 후 이를 그 선박에 비치하고,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2014. 11. 19., 2016. 12. 27.,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검인받은 선박의 소유자는 그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내용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변경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검인을 받은 후 이를 그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31.>

③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여야 하는 대상 선박의 범위와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31.>

[제목개정 2016. 12. 27.]

제32조(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①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 중에서 선장을 보좌하여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반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유해액체물질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1명 이상을 추가로 임명·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3. 24., 2025. 12. 30.>

②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증빙서류를 선박 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여행·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리자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 10. 31., 2020. 3. 24.>

④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또는 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에게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을 지휘·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31.>

⑤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임명·보유한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 및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30.>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자의 업무내용·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31., 2020. 3. 24., 2025. 12. 30.>

[제목개정 2017. 10. 31.]

- 제32조의2(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 관리)** ① 해상에서 유조선 간(이하 “선박대선박”이라 한다)에 기름화물을 이송하려는 선박소유자는 그 이송하는 작업방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술한 계획서(이하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인을 받은 후 선박에 비치하고, 이송작업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선박의 선장은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이송작업에 관하여 이송량, 이송시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름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하고,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 ③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역·수역 안에서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작업을 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작업책임자 명단 및 작업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3. 10. 24.>
- ④ 제1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비치 대상선박 및 검인절차, 제2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작업의 기록, 제3항에 따른 작업책임자의 자격, 작업계획의 보고사항 및 보고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23. 10. 24.>
- [본조신설 2011. 6. 15.]

제3절 해양시설에서의 해양오염방지

- 제33조(해양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① 해양시설의 소유자(설치·운영자를 포함하며, 그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시설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시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내용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12. 27., 2020. 2. 18.>
1.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의 해양시설: 해양수산부장관
 2. 제1호 외의 해역의 해양시설: 시·도지사
-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의 신고내용, 변경신고 하여야 하는 중요한 내용 및 신고·변경신고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12. 27.>
- [제목개정 2016. 12. 27.]

- 제34조(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의 관리)** 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을 취급하는 해양시설 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그 시설 안에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의 기록부(이하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의 사용량과 반입·반출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의 보존기간은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그 기재사항·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35조(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관리 등) ①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을 사용·저장 또는 처리하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이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해양오염비상계획서(이하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검인을 받은 후 그 해양시설에 비치하고,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그 해양시설에 비치하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의 사무실에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6. 12. 27.,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검인받은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내용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변경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검인을 받은 후 이를 그 해양시설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신설 2017. 10. 31.>

③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31.>

[제목개정 2016. 12. 27.]

제36조(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①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그 해양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해양시설로부터의 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3. 24., 2025. 12. 30.>

②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바꾸어 임명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③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여행·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리자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7. 10. 31., 2020. 3. 24.>

④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또는 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에게 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을 지휘·감독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7. 10. 31.>

⑤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임명·보유한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 및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5. 12. 3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자의 업무내용,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31., 2020. 3. 24., 2025. 12. 30.>

[제목개정 2017. 10. 31.]

제36조의2(해양시설의 안전점검) 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과 관련된 해양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그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안전점검 결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그 안전점검 결과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1.>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안전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3년간 그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3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이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1.>

⑤ 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⑥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31.>

[본조신설 2014. 3. 24.]

제4절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

제37조(선박 및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의 수거·처리) ① 선박 및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거·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11., 2008. 2. 29., 2009. 12. 29., 2012. 6. 1., 2013. 3. 23., 2017. 10. 31., 2023. 10. 24.>

1.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자
2. 제7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유창청소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유창청소업자”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물질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거·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2020. 3. 24.>

1. 육상에 위치한 해양시설(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된 해양시설을 포함한다)

2.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선박
3. 조선소에서 건조 완료 후 「선박법」 제8조제1항 또는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기 전에 시운전하는 선박
4.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선박
5. 조선소 또는 수리조선소에서 수리 중인 선박(항해 중에 발생한 오염물질을 제1항에 따라 모두 수거·처리한 선박에 한정한다)
6. 해체 중인 선박

제38조(오염물질저장시설) ① 해역관리청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배출되거나 해상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이하 “오염물질저장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해역관리청이 아닌 자로서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역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3. 10. 24.>

③ 해역관리청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3. 10. 24.>

④ 해역관리청 및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는 오염물질저장시설에 반입·반출되는 오염물질의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오염물질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관리하여야 하고,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는 오염물질관리대장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물질관리대장의 기재사항, 보존기간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3. 10. 24.>

⑤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의 결격사유 및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71조 및 제74조를 각각 준용한다.<신설 2023. 10. 24.>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세부적인 설치·운영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3. 10. 24.>

제38조의2(오염물질저장시설의 운영 등) ①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38조제6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운영할 것
 2. 운영 중인 오염물질저장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을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위탁받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오염물질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 ②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오염물질저장시설에 저장되는 오염물질 및 오염수를 해양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 9호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오염물질 및 오염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③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는 오염물질저장시설에서 처리된 오염수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같은 조 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처리절차 등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10. 24.]

제38조의3(시설의 개선명령 등) ① 해역관리청은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개선, 6개월 이내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38조제5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3. 1년에 2회 이상 시설의 운영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4. 시설의 운영정지기간 중에 시설을 운영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8조의2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신고 후 1년 이내에 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8. 시설의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24.]

제5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조사 등

제39조(잔류성오염물질의 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잔류성오염물질의 오염실태 및 진행상황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측정·조사결과 해양환경의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잔류성오염물질의 사용금지 및 사용제한 요청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측정·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정·조사에 있어 정확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잔류성오염물질의 공정시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된 공정시험기준은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제목개정 2017. 10. 31.]

제40조(유해방오도로의 사용금지 등) ①누구든지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에 유해방오도로 또는 이를 사용한 설비 등(이하 “유해방오시스템”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에 방오도로 또는 이를 사용한 설비 등(이하 “방오시스템”이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장 해양에서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제41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 ①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박에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감축하기 위한 설비(이하 “대기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대기오염방지설비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작동되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1조의2(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계산 등) ①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건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조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소 출력 이상의 추진기관을 설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를 계산하여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10. 18.>

1. 선박의 길이·너비·깊이·운송능력 또는 기관출력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
 2. 선박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3. 선박의 사용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
 4.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을 초과하여 변경하는 등 선박에 에너지효율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
- ② 제1항에 따른 선박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계산된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을 초과하는 선박의 건조 또는 개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산된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와 제2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0. 18.>

[본조신설 2012. 12. 18.]

- 제41조의3(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등)** ①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감시·평가 및 개선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기술한 계획서(이하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제1항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를 비치하여야 하는 선박 중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선박의 소유자는 작성한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검사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24.>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요청을 받은 경우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고, 적합한 경우 해당 선박의 소유자에게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24.>
- ④ 선박의 소유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를 해당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24.>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기재사항, 작성방법, 검사방법 및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0. 3. 24.>

[본조신설 2012. 12. 18.]

[제목개정 2020. 3. 24.]

- 제41조의4(선박연료유 사용량 등 보고 등)** ① 제41조의3제3항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를 발급받은 선박의 소유자는 해당 연도에 선박에서 사용한 연료유의 사용량, 선박의 운항거리 및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이라 한다)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8.>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소유자는 해당 선박이 대한민국선박이 아니게 되거나 선박의 매각, 폐선 등으로 선박을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연도의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을 검증하고, 적합한 경우 해당 선박의 소유자(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보고한 자를 말한다)에게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선박의 소유자는 제3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를 해당 선박에 5년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8.>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을 검증한 결과를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보고 및 검증 방법,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의 발급 및 국제해사기구에의 검증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24.]

제41조의5(선박에너지효율지수의 계산 등) ①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지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조를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선박의 길이, 너비, 깊이, 운송능력 또는 기관출력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
2. 선박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3. 선박의 사용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
4.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을 초과하여 변경하는 등 선박에너지효율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

② 제1항에 따른 선박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계산된 선박에너지효율지수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을 초과하는 선박의 운항 또는 개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계산된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가 제2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과 같거나 그보다 작을 경우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를 선박에너지효율지수로 볼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0. 18.]

제41조의6(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의 계산 등) ①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선박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매년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를 계산하고 계산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계산된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허용값을 초과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에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검사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개선계획의 기재사항,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0. 18.]

제42조(오존층파괴물질의 배출규제) ①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존층파괴물질을 배출(선박의 유지보수 또는 장치, 설비의 배치 중에 발생하는 배출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오존층파괴물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누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선박의 소유자는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선박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으로부터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제거하는 때에는 그 설비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체 또는 단체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고시되는 업체 또는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회수설비 및 수용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④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총톤수 400톤 이상 선박의 소유자는 오존층파괴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설비의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1. 6. 15.>
- ⑤ 제4항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에서 오존층파괴물질을 배출하거나 충전하는 경우 그 오존층파괴물질량 등을 기록한 장부(이하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라 한다)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신설 2011. 6. 15.>
- ⑥ 제3항에 따른 업체 또는 단체의 지정 방법 및 절차와 제5항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3. 24.>

제43조(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①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디젤기관을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상용·인명구조용 선박 등 비상사용 목적의 선박 및 군함·해양경찰청합정 등 방위·치안 목적의 공용선박에 설치되는 디젤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27., 2008. 2. 29., 2011. 6. 1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디젤기관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배기가스정화장치 등을 설치하여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른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디젤기관을 작동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시기, 적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1. 6. 15., 2013. 3. 23.>

④ 선박의 소유자는 배출규제해역을 진입·진출하는 경우 또는 해당 해역에서 운전상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디젤기관의 운전상태, 선박의 위치 및 일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그 선박의 기관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2022. 10. 18.>

제44조(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등) ① 선박의 소유자는 배출규제해역과 그 밖의 해역으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24., 2022. 10. 18.>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설치·가동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황산화물 배출제한 기준량 이하로 황산화물 배출량을 감축하는 경우
2.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을 충족하는 연료유를 공급받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박이 운항하는 해역의 인근 항만에서 황함유량 기준을 충족하는 연료유를 공급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② 삭제 <2020. 3. 24.>

③선박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유의 교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그 선박의 기관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3. 24., 2022. 10. 18.>

1. 배출규제해역을 항해하는 경우

2. 제1항제1호에 따른 배기가스정화장치가 제대로 가동되지 아니하여 같은 호에 따른 황산화물 배출제한 기준량 이하로 황산화물 배출량을 감축하지 못한 경우

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선박의 소유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일지를 해당 연료유를 공급받은 때부터 1년간 그 선박에 보관하여야 한다.

⑤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만족하기 위하여 황함유량이 다른 연료유를 다른 탱크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선박이 배출규제해역으로 들어가기 전이나 그 해역에서 나오기 전에 조치하여야 할 연료유 전환방법이 적혀있는 절차서(이하 “연료유전환절차서”라 한다)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신설 2011. 6. 15., 2020. 3. 24., 2022. 10. 18.>

⑥ 선박의 소유자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점검을 위하여 제115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 사용 중인 연료유의 견본을 채취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거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기관이 설치된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2. 10. 18.>

⑦ 제6항에 따른 견본채취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22. 10. 18.>

제44조의2(부적합 연료유의 적재금지) 선박의 소유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배출규제해역 외의 해역에서의 황함유량 기준을 말한다. 이하 제45조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선박에 적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0. 18.>

1.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연료유를 화물로서 운송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3. 24.]

제45조(연료유의 공급 및 확인 등) ①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선박연료공급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료유의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제44조제1항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선박에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료유를 공급받는 선박이 제4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0. 31., 2020. 3. 24.>

1.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어업용 면세연료유를 공급하는 수산업협동조합

②선박연료공급업자는 연료유에 포함된 황성분 등이 기재된 연료유공급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해당 연료유로부터 채취한 견본(이하 “연료유견본”이라 한다)과 함께 선박의 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소형의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선박연료공급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2019. 8. 20.>

③선박연료공급업자(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자를 제외한다)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료유공급서를 3년간 그의 주된 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선박의 소유자는 연료유공급서의 사본을 3년간 선박에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7. 10. 31.>

④선박의 소유자는 연료유를 공급받은 날부터 해당 연료유가 소모될 때까지 연료유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연료유가 소모될 때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0., 2020. 3. 24.>

1.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2. 제1호 외의 선박: 1년

⑤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료유공급서의 양식 및 연료유견본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의 선박연료공급업자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속한 국가의 관계 행정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료유의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공급한 때

2. 연료유공급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연료유를 공급한 것으로 확인된 때

제46조(선박 안에서의 소각금지 등) ①누구든지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에 다음 각 호의 물질을 선박 안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의 물질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소각설비에서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1. 6. 15., 2013. 3. 23.>

1. 화물로 운송되는 기름·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의 잔류물과 그 물질에 오염된 포장재

2. 폴리염화비페닐

3.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량 이상의 중금속이 포함된 쓰레기

4. 할로겐화합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정제된 석유제품

5. 폴리염화비닐

6. 육상으로부터 이송된 폐기물

7. 배기가스정화장치의 잔류물

②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에 발생하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선박 안에서 소각하려는 선박의 소유자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선박에 설치된 소각설비(이하 “선박소각설비”라 한다)를 작동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에 발생하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은 선박의 주기관·보조기관 또는 보일러에서 소각할 수 있다. 다만, 항만 또는 어항구역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선박소각설비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7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규제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으로부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규제하기 위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항만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항만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함유한 기름·유해액체물질 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선박에 싣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유증기(油蒸氣)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고 작동시켜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시설 및 같은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 4. 27., 2008. 2. 29., 2013. 3. 23.>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증기 배출제어장치의 작동에 관한 기록을 동 장치를 작동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7조의2(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① 원유를 운송하는 유조선의 소유자는 그 유조선에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중 또는 항해 중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는 관리계획서(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인을 받은 후 선박에 비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의 비치 대상선박, 기재사항, 검인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6. 15.]

제48조(적용제외) 제41조, 제42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7조의2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2012. 12. 18., 2013. 3. 23., 2020. 3. 24.>

1. 선박 및 해양시설의 안전확보 또는 인명구조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2.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손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3. 해저광물의 탐사 및 발굴작업의 과정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4. 제54조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예비검사 등을 위하여 해당 설비를 시운전하는 경우

제5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선박의 검사 등

제49조(정기검사) ①폐기물오염방지설비, 기름오염방지설비,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 및 대기오염방지설비(이하 “해양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체 및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화물창을 설치, 유지하여야 하는 선박(이하 “검사대상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가 해양오염방지설비, 선체 및 화물창(이하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이라 한다)을 선박에 최초로 설치하여 항해에 사용하려는 때 또는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50조(중간검사) ①검사대상선박의 소유자는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의 사이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중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중간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에 그 검사결과를 표기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중간검사의 세부종류 및 그 검사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51조(임시검사) ①검사대상선박의 소유자가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을 교체, 개조 또는 수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임시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임시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에 그 검사결과를 표기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52조(임시항해검사) ①검사대상선박의 소유자가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를 교부받기 전에 임시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해양오염방지설비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임시항해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임시항해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임시해양 오염방지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53조(방오시스템검사) ①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방오시스템을 선박에 설치하여 항해에 사용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방오시스템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방오시스템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방오시스템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가 방오시스템을 변경·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임시방오시스템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임시방오시스템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오시스템검사증서에 그 검사결과를 표기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54조(대기오염방지설비의 예비검사 등) ①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제조·개조·수리·정비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예비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예비검사에 합격한 대기오염방지설비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예비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예비검사에 합격한 대기오염방지설비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중간검사·임시검사 및 임시항해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예비검사의 검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54조의2(에너지효율검사) ① 제41조의2제1항, 제41조의3제1항 및 제41조의5제1항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선박에너지 효율에 관한 검사(이하 “에너지효율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10. 1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에너지효율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효율검사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에너지효율검사의 검사신청 시기, 검사사항 및 검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12. 18.]

제55조(협약검사증서의 교부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정기검사·중간검사·임시검사·임시항해검사 및 방오시스템검사(이하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라 한다)에 합격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으로부터 그 선박을 국제항해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검사증서(이하 “협약검사증서”라 한다)의 교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이 국제협약의 당사국인 외국(이하 “협약당사국”이라 한다)의 정부로부터 직접 협약검사증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의 영사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협약당사국의 정부로부터 그 국가의 선박에 대하여 협약검사증서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대하여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를 행하고, 해당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협약검사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협약검사증서는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및 방오시스템검사증서와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6조(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의 유효기간) ①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방오시스템검사증서, 에너지효율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8.>

1.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5년
2. 방오시스템검사증서: 영구
3. 에너지효율검사증서: 영구
4. 협약검사증서: 5년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 안에서 그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에 불합격한 선박의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검사에 합격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④ 선박의 소유자가 제41조의2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및 제41조의5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지수가 변경되는 개조를 한 경우 그 개조를 한 선박에 대하여 에너지효율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며, 그 선박의 에너지효율검사증서는 해당 검사에 합격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신설 2022. 10. 18.>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을 기산(起算)하는 기준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2. 10. 18.>

제57조(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을 교부받지 아니한 선박의 항해 등) ①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임시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방오시스템검사증서 또는 에너지효율검사증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검사대상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 에너지효율검사 또는 「선박안전법」 제7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기 위하여 항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2. 18.>

②선박의 소유자는 협약검사증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선박을 국제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임시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방오시스템검사증서, 에너지효율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이하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이라 한다)에 기재된 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그 선박을 항해(국제항해를 포함한다)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 에너지효율검사 또는 「선박안전법」 제7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기 위하여 항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2. 18.>

④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을 교부받은 선박의 소유자는 그 선박 안에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8조(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오염방지설비등, 방오시스템 또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등이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항, 제27조제1항, 제2항,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 기술기준 또는 황함유량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해양오염방지설비등, 방오시스템 또는 연료유의 교체, 개조, 변경, 수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3. 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중 해양오염방지설비등 및 방오시스템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교체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계속하여 사용하려고 하거나 사용하면 그 선박에 대하여 항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해양오염 우려 없이 개선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수리할 수 있는 항으로 항해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2. 29.,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수정, 교체, 개조, 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8., 2013. 3. 23., 2022. 10. 18.>

1. 선박에너지효율이 제41조의2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계산방법 및 허용값, 추진기관의 최소 출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선박에너지효율이 제41조의5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지수 및 제41조의6에 따른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의 계산방법 및 허용값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제59조(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항만국통제)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우리나라의 항만, 항구 또는 연안에 있는 외국선박에 설치된 해양오염방지설비등과 방오시스템, 외국선박이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또는 선박에너지효율이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기술상의 기준 또는 황함유량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선장에게 해양오염방지설비등과 방오시스템, 연료유 또는 선박에너지효율 관련 설비 등의 교체, 개조, 변경, 수리, 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항만국통제”라 한다)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12. 18., 2013. 3. 23., 2020. 3. 24.>

②항만국통제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는 「선박안전법」 제68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재검사) ①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 예비검사 및 에너지효율검사를 받은 자가 그 검사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과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12. 18., 2013. 3. 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검사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검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통보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 예비검사 및 에너지효율검사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검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2. 18.>

제6장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치

제61조(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시행) ①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우려가 있거나 배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의 사전예방 또는 방제에 관한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국가긴급방제계획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09. 2. 6.>

제62조(방제대책본부 등의 설치)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오염사고로 인한 긴급방제를 총괄지휘하며, 이를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5., 2014. 11. 19., 2017. 7. 26.>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방제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및 결과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6. 1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제1항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6. 15.>

제63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의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8. 20.>

1.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이 적재된 선박의 선장 또는 해양시설의 관리자.
이 경우 해당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의 배출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오염물질의 배출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

3. 배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절차 및 신고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64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①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방제의무자”라 한다)는 배출된 오염물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방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2. 배출된 오염물질의 확산방지 및 제거

3. 배출된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

②오염물질이 항만의 안 또는 항만의 부근 해역에 있는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제의무자가 방제조치를 취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1. 해당 항만이 배출된 오염물질을 싣는 항만인 경우에는 해당 오염물질을 보내는 자

2. 해당 항만이 배출된 오염물질을 내리는 항만인 경우에는 해당 오염물질을 받는 자

3. 오염물질의 배출이 선박의 계류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류시설의 관리자

4.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배출원인과 관련되는 행위를 한 자

③해양경찰청장은 방제의무자가 자발적으로 방제조치를 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자에게 시한을 정하여 방제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해양경찰청장은 방제의무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제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방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제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의무자가 부담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 방제조치에 소요된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의 방제조치에 사용되는 자재 및 약제는 제110조제4항·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형식승인·검정 및 인정을 받거나 제110조의2제3항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오염물질의 방제조치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긴급방제조치에 필요하고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1. 6. 15., 2014. 11. 19., 2017. 7. 26.>

제65조(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조치 등) ①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좌초·충돌·침몰·화재 등의 사고로 인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

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해양경찰청장은 장기간 방치·계류된 선박 등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하 “해양오염 취약선박”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우려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하고,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6. 2. 27.>

③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제2항의 위험성 평가의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 그 내용에 따라 필요한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배출방지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26. 2. 27.>

1.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을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고, 제3항 단서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직접 배출방지조치에 관하여는 제6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방제의무자”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 해양시설의 소유자”로 본다.<개정 2026. 2. 27.>

제66조(자재 및 약제의 비치 등) ① 항만관리청 및 선박·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되는 자재 및 약제를 보관시설 또는 해당 선박 및 해양시설에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5.>

② 제1항에 따라 비치·보관하여야 하는 자재 및 약제는 제110조제4항·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형식승인·검정 및 인정을 받거나, 제110조의2제3항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1. 6. 15.>

③ 제1항에 따라 비치·보관하여야 하는 자재 및 약제의 종류·수량·비치방법과 보관시설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1. 6. 15., 2013. 3. 23.>

제67조(방제선등의 배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기름의 해양유출사고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이하 “방제선등”이라 한다)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 안에 배치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1. 총톤수 500톤 이상의 유조선
2. 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유조선을 제외한 선박에 한한다)
3. 신고된 해양시설로서 저장용량 1만 킬로리터 이상의 기름저장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제선등을 배치하거나 설치하여야 하는 자(이하 “배치의무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선등을 공동으로 배치·설치하거나 이를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 10. 31.>

③해양경찰청장은 방제선등을 배치 또는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선박입출항금지 또는 시설사용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배치의무자로 하여금 방제조치 및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방지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치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방제선등을 공동으로 배치·설치하거나 해양환경공단에게 위탁한 때에는 공동 배치·설치자 또는 해양환경공단에 대하여 공동으로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31.>

- 제68조(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① 해양경찰청장은 방제의무자의 방제조치만으로는 오염물질의 대규모 확산을 방지하기가 곤란하거나 긴급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4. 11. 19., 2017. 7. 26.>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안의 자갈·모래 등에 달라붙은 기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기관의 장이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1. 6. 15.>
1. 기름이 하나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할 해안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2. 기름이 둘 이상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관할 해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 이 경우 기름이 둘 이상의 시·도지사 관할 해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관할 시·도지사로 한다.
 3. 군사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해안에 대한 방제조치: 해당 시설 관리기관의 장
- ③ 해양경찰청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시·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방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방제에 사용되는 자재·약제, 방제장비, 인력 및 기술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11. 6. 15., 2014. 11. 19., 2017. 7. 26.>
-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 6. 15.>
- ⑤제4항에 따라 부담하게 한 비용의 징수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개정 2011. 6. 15.>

- 제68조의2(해양자율방제대)** ① 해양경찰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해양오염방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에 소속된 어업인, 지역주민 등으로 해양자율방제대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자율방제대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해양경찰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자율방제대와 구성원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원이 해양오염방제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원의 자격, 구성·운영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20. 3. 24.]

제69조(방제분담금) ①배치의무자는 기름 등의 유출사고에 따른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 등 해양오염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분담금(이하 “방제분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1.>

- ②방제분담금과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제9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개정 2017. 10. 31.>
- ③방제분담금은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10. 31.>

제69조의2(방제분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①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은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방제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방제분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은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방제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방제분담금과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0. 31.]

제69조의3(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 ①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은 방제분담금의 산정 등을 위하여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적하(積荷) 목록 및 기름저장시설의 유류 수량량 등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0. 31.]

제7장 해양환경관리업 등

제70조(해양환경관리업)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해양환경관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12. 1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

1. 삭제 <2019. 12. 3.>
2. 해양오염방제업 : 오염물질의 방제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해상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을 방제하는 사업
3. 유창청소업(油艙清掃業): 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선박 또는 해양시설(그 해양시설이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인 경우에 한정한다)에서 발생하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의 수거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4. 삭제 <2019. 12. 3.>

5. 삭제 <2019. 12. 3.>

②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요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장비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3. 24.>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환경관리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70조의2 삭제 <2019. 12. 3.>

제7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 5. 21., 2017. 10. 31.>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 <2017. 10. 31.>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72조(해양환경관리업자의 의무) ①해양환경관리업자는 오염물질의 방제 및 오염물질의 청소·수거 등에 관한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처리대장을

작성하고 해당 선박 또는 시설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

②해양환경관리업자가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으로부터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을 작성하고 해당 오염물질의 위탁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삭제 <2019. 12. 3.>

④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오염방제업을 등록한 자는 제64조에 따라 방제의무자 등이 방제조치를 하는 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고의로 오염물질 방제업무를 지연하거나 방제의무자 등의 방제조치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0. 3. 24.>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실적서·처리대장 및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의 작성방법·보존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 2020. 3. 24.>

제73조(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 등) 해양경찰청장은 해양환경관리업자(휴·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 등 처리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을 이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정한 처리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

제74조(해양환경관리업의 승계 등) ①해양환경관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및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환경관리업자의 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개정 2010. 3. 31., 2016. 12. 2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

④제71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계에 있어 이를 준용한다.

제75조(등록의 취소 등) ①해양경찰청장은 해양환경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6. 1.,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27., 2017. 7. 26., 2017. 10. 31., 2019. 12. 3.>

1. 제7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71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3.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
 8.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76조 삭제 <2019. 12. 3.>

제76조의2 삭제 <2019. 12. 3.>

제8장 해양오염영향조사

제77조(해양오염영향조사) ①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을 통하여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② 해양오염영향조사의 조사기간 및 조사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5. 12. 30.>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2. 30.>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영향조사를 하여야 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2. 30.>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별도의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8. 2. 29., 2009. 2. 6., 2013. 3. 23., 2025. 12. 30.>

제78조(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 및 항목) 해양오염영향조사는 오염물질에 의하여 해로운 영향을 받게 되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 분야 등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세부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주민의 의견수렴) ①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은 해양오염영향에 대한 조사서(이하 “해양오염영향조사서”라 한다)를 작성함에 있어 미리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해당 조사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해양오염영향조사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때에는 해양오염영향조사서의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이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80조(조사의 비용) ①제7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사고를 일으킨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2. 30.>

②제77조제4항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5. 12. 30.>

제81조(조사기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다. <개정 2011. 6. 15., 2014. 5. 21., 2017. 1. 17., 2017. 10. 31.>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2017. 10. 31.>
3.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지정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대표이사가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

제82조(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2025. 12. 30.>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77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8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만, 법인의 대표이사가 제81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이사를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때
5. 다른 사람에게 지정기관의 권한을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때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양오염영향조사를 부실하게 행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83조(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업무계속) ①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은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해양오염영향조사에 한하여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향조사를 계속하는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은 그 업무를 완료하는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으로 본다.

제83조의2(침몰선박 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해양사고로 해양에서 침몰된 선박(이하 이 조에서 “침몰선박”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침몰선박에 대한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2. 침몰선박의 해양오염사고 유발 가능성에 대한 위해도(危害度) 평가
3. 침몰선박에 대한 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침몰선박에 관한 정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몰선박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다만, 그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침몰선박을 처분하여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의 위해도 평가방법,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해도 저감대책의 구체적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 방법 및 납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12. 18.]

제9장 삭제 <2024. 1. 2.>

제84조 삭제 <2024. 1. 2.>

제85조 삭제 <2024. 1. 2.>

제86조 삭제 <2024. 1. 2.>

제87조 삭제 <2024. 1. 2.>

제88조 삭제 <2024. 1. 2.>

제89조 삭제 <2024. 1. 2.>

제90조 삭제 <2024. 1. 2.>

제91조 삭제 <2024. 1. 2.>

제92조 삭제 <2024. 1. 2.>

제93조 삭제 <2024. 1. 2.>

제94조 삭제 <2024. 1. 2.>

제95조 삭제 <2024. 1. 2.>

제10장 해양환경공단 <개정 2017. 10. 31.>

제96조(공단의 설립) ①해양환경의 보전·관리·개선을 위한 사업, 해양오염방제사업, 해양환경·해양오염 관련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사업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7. 10. 31.>

②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사업소·연구기관·교육기관 등을 둘 수 있다.

제97조(사업) 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업

2. 해양환경개선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오염물질의 수거·처리를 위한 사업

나. 오염물질 저장시설의 설치·운영 및 수탁관리

다.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선박의 인양·예인

라. 해양환경 관련 시험·조사·연구·설계·개발 및 공사감리

3. 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해양오염방제업무 및 방제선등의 배치·설치(위탁·대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나. 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자재·약제의 비치 및 보관시설의 설치 등(위탁·대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 그 밖에 해양오염방제와 관련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5. 해양환경 관련 국제협력 및 기술용역사업

6. 해양환경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홍보

7. 제1호 내지 제6호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해양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98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지사·사업소 또는 연구기관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자격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 및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내부규약·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②공단의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99조(임원) ①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인으로 한다. 이 경우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 중 4인은 상임으로,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이사장 및 감사를 임명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사장 또는 감사가 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임기 중이라도 각각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이사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를 임명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이사가 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0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0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 5. 21.>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②임원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02조(이사회) ①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이사회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재원)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 10. 31., 2021. 4. 13.>

1. 방제분담금 및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금
2.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3.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외부로부터의 차입금
4. 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5. 1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6. 자산운용수익금
7. 정부로부터의 지원금
8. 관계 법령에 따른 기부금
9.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104조(출자 등) ①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단은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금을 차입(국제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05조(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불구하고 공단에 국·공유재산을 5년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법률 제14516호(2016. 12. 27.) 제10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7년 6월 27일까지 유효함]

제106조(채권의 발행) ①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권발행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③국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⑤그 밖에 채권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7조(예산 및 결산 등) ①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공단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08조(업무의 지도·감독)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9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 중 긴급방제조치에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1. 6. 1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09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장 보칙

제110조(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형식승인 등) ① 삭제 <2023. 10. 24.>

② 삭제 <2023. 10. 24.>

③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를 제외한다), 방오시스템 및 선박소각설비(이하 “형식승인대상설비”라 한다)를 제작·제조하거나 수입하려

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고,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험·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제작·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2. 6. 1., 2013. 3. 23., 2023. 10. 24.>

④제66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하는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험·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제작·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하는 자재·약제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2. 29., 2012. 6. 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자재·약제에 대한 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10. 24.>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거나 수입한 때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정에 합격한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자재·약제에 대하여는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10. 24.>

⑦협약당사국에서 선박에 형식승인대상설비를 설치하거나 자재·약제를 비치·보관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정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성능시험 및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8. 2. 29., 2012. 6. 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⑧제60조는 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자재·약제의 검정에 대한 불복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0조 중 “검사”는 “검정”으로, “재검사”는 “재검정”으로 본다.<개정 2012. 6. 1.>

⑨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27., 2017. 7. 26., 2023. 10. 24.>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2.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2의2.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기준에 미달하는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자재·약제를 판매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때

⑩ 제9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성능시험의 합격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4.>

⑪ 해양수산부장관은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다.<신설 2023. 10. 24.>

⑫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하여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보완 또는 교환을 명하고, 형식승인 및 성능시험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23. 10. 24.>

⑬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항에 따라 보완 또는 교환을 명하거나 형식승인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신설 2023. 10. 24.>

⑭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 따른 성능검사, 보완·교환 또는 형식승인의 취소 및 그 사실의 공표 등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23. 10. 24.>

[제목개정 2023. 10. 24.]

제110조의2(성능인증) ①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재·약제를 제외한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하는 자재·약제(이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라 한다)를 제작·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27., 2017. 7. 26.>

② 제1항의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미리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27.,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를 제작·제조 및 수입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27., 2017. 7. 26.>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27., 2017. 7.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본조신설 2011. 6. 15.]

제110조의3(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자

(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23. 10. 24.>

1.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인 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7. 10. 31.]

제111조(선박해체의 신고 등) ①선박을 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의 해체작업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개시 7일 전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육지에서 선박을 해체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박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작업계획이 미흡하거나 그 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3. 24.>

③해역관리청은 방치된 선박의 해체 및 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장비 등을 갖춘 선박처리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12조(업무의 대행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12. 18., 2013. 3. 23., 2016. 12. 27., 2018. 12. 31., 2020. 3. 24., 2022. 10. 18., 2025. 10. 1.>

1. 제22조의2에 따른 배출물의 승인
- 1의2.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의 검인
- 1의3.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기록부의 검사 및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의 발급
- 1의4.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검인
- 1의5.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및 그 허용값의 국제해사기구 제출
- 1의6. 제4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검사 및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의 발급
- 1의7. 제41조의4제3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검증 및 검증확인서의 발급

- 1의8. 제41조의4제5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을 검증한 결과의 국제해사기구 제출
2.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유증기 배출제어장치의 검사
- 2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의 검인
3.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 예비검사 및 에너지효율검사. 다만, 대기오염방지설비 중 디젤기관
의 질소산화물 배출방지설비에 대한 검사대행자 지정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해양
오염방지검사증서,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오시스템검사증서, 제54조제2항의 규정
에 따른 예비검사증서,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증서 및 제55조제1항의 규
정에 따른 협약검사증서의 교부
5.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 ②해양경찰청장은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에 관한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
는 선급법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12. 31.>
-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1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
인, 성능시험, 검정 및 인정, 제1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업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1. 6.
1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10. 24.>
-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요건 및 지도,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
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13조(업무대행 등의 취소)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12조제1항 내지 제
3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업무대행의 협정
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정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
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대행의 협정이 체결되거나 지정된 때
2. 제1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때(업무대행의 지정의 경우에 한
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4.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체결된 협정에 위반한 때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12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따
른 협의를 거쳐 검사대행자로 지정된 자가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정을 위반하게 되
는 경우에는 그 협정의 취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대행의 협정 또는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14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① 해역관리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해양환경관리 또는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긴급한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인력 및 장비의 동원을 각각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공단은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열람·복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역관리청·해양경찰청장 또는 공단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115조(출입검사·보고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및 연료유를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제33조에 따른 신고에 관한 경우만 해당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사업장 및 사무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출입하여 확인·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2020. 2. 18.>

1. 해양시설의 소유자(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

2. 선박급유업자

3. 제47조제2항에 따라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한 해양시설의 소유자

4. 삭제 <2019. 12. 3.>

5. 삭제 <2019. 12. 3.>

6. 제110조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

③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제116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정된 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에 출입하여 확인·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1. 해양시설의 소유자(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업무만 해당한다)

2. 제70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유창청소업을 하는 자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에서 해양오염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또는 해양오염 취약선박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선박에 출입하여 확인·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2014. 11. 19., 2017. 7. 26., 2024. 12. 20., 2026. 2. 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목적·성명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개

정 2009. 12. 29.>

⑥선박의 소유자 등 관계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검사 및 자료 제출·보고요구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 12. 29.>

⑦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출입검사 및 보고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점검사항·검사예고 및 점검결과회신 등의 업무를 전산망을 구성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09. 1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16조(해양환경감시원)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감시원의 임명·자격·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 12. 29.>

제116조의2(명예해양환경감시원)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효율적인 해양환경 관리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의 회원 또는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명예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해양환경감시원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직무범위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8.]

제117조(정선·검색·나포·입출항금지 등) 선박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역관리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정선·검색·나포·입출항금지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118조(비밀누설금지 등) ①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1. 2.>

②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4. 1. 2.>

제119조(국고보조 등)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
2. 삭제<2019. 12. 3.>
3.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

②국가는 해양오염방지설비, 오염물질저장시설 그 밖의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④ 제3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의 대상·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 12. 20.>

제119조의2(신고포상금) ①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

1.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의 기준·방법과 절차,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12. 29.]

제120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6. 1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10. 24.>

1.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분석능력인증의 취소
- 1의2.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의 폐쇄
2.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취소
3.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취소
4. 삭제 <2024. 1. 2.>
5. 제110조제9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6. 제110조의2제4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

제121조(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교육·훈련)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제32조제1항에 따른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 관련 교육·훈련과정
2. 제36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 관련 교육·훈련과정
3.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술요원의 자격 관련 교육·훈련과정
4. 그 밖에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훈련과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훈련과정

[전문개정 2020. 3. 24.]

제122조(수수료) ① 이 법에 따른 형식승인, 인증, 검인, 승인(제22조의2에 따른 배출물 승인에 한정한다), 검사, 성능시험, 검정, 인정, 검증(제41조의4제3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검증에 한정한다), 지정(제42조제3항에 따른 업체 또는 단체의 지정에 한정한다) 및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6. 15.,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27., 2017. 7. 26., 2020. 3. 24., 2023. 10. 24.>

② 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오염물질을 수거, 처리할 경우 오염물질을 발생시킨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거, 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1. 4. 13.>

③ 공단은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재, 약제의 비치 또는 방제 및 방제선등의 배치, 설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1. 4. 13.>

④ 제112조에 따른 업무대행자가 형식승인, 검인, 승인(제22조의2에 따른 배출물 승인에 한정한다), 검사, 성능시험, 검정, 인정 및 검증(제41조의4제3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검증에 한정한다)을 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1. 6. 15.,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27., 2017. 7. 26., 2020. 3. 24., 2021. 4. 13., 2023. 10. 24.>

제123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이 법에 따른 시, 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 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 3. 24.>

[제목개정 2012. 12. 18.]

제1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 직원, 제112조에 따른 형식승인, 검사, 성능시험, 검정 등과 관련한 업무대행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 6. 15., 2024. 1. 2.>

제125조 삭제 <2017. 3. 21.>

제12장 벌칙

제1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1.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을 배출한 자
2. 삭제 <2024. 1. 2.>

제1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1.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 폐기물을 배출한 자
2. 과실로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을 배출한 자
3. 제5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4. 제64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제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5.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제1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6. 15., 2012. 6. 1., 2016. 12. 27., 2023. 10. 24., 2024. 1. 2.>

1. 과실로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폐기물을 배출한 자
2.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3.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4.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체구조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5.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6. 제2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의 화물창을 설치한 자
- 6의2. 제38조의3에 따라 시설폐쇄명령을 받고 시설을 운영하거나 시설의 운영정지명령을 받고 운영정지기간 중 시설을 운영한 자
7.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방오도료·유해방오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적법한 기준 및 방법에 따른 방오도료·방오시스템을 사용·설치하지 아니한 자
8. 제6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제선등을 배치 또는 설치하지 아니한 자
9.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입출항금지명령 또는 시설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10.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양환경관리업을 한 자

11.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영업을 하거나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자
12.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13. 제82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가 업무를 하거나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를 한 자
14. 삭제 <2024. 1. 2.>
15. 삭제 <2024. 1. 2.>
16. 삭제 <2024. 1. 2.>
- 16의2. 제11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형식승인이 면제된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하는 자재·약제를 판매한 자
17. 제110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를 한 자
- 17의2. 제110조의2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에 대한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성능인증이 취소되었음에도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표시하여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를 제작·제조 및 수입하여 판매한 자
18. 제117조의 규정에 따른 정선·검색·나포·입출항금지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12. 29., 2011. 6. 15., 2019. 1. 8., 2020. 3. 24.>

1.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별관리해역 내에 시설을 설치하거나 오염물질의 총량배출을 위반한 자
2. 삭제 <2019. 12. 3.>
3.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4. 제4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존층파괴물질을 배출한 자
5. 제4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디젤기관을 작동한 자
6.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한 자
- 6의2.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선박에 적재한 자
7. 제4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공급한 자
8. 제4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작동시키지 아니한 자
9. 제4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한 자
10.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1. 삭제 <2024. 1. 2.>

12. 삭제 <2024. 1. 2.>

13. 삭제 <2024. 1. 2.>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7. 12. 21., 2009. 12. 29., 2011. 6. 15., 2012. 12. 18., 2016. 12. 27., 2023. 10. 24., 2024. 1. 2.>

1. 삭제 <2019. 12. 3.>

2.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유지·작동한 자

3.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유지·작동한 자

4. 제2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유지·작동한 자

5.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평형수 또는 기름을 적재한 자

6.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포장유해물질을 운송한 자

7.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을 수거·처리하게 한 자

8. 제49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8의2. 제54조의2를 위반하여 에너지효율검사를 받지 아니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9. 제58조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의2. 제64조제6항을 위반하여 제110조제4항·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 검정, 인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10조의2제3항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한 자재·약제를 방제조치에 사용한 자

10.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재·약제를 보관시설 또는 선박 및 해양시설에 비치·보관하지 아니한 자

11.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처리명령을 위반한 자

12. 삭제 <2023. 10. 24.>

13. 제11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형식승인, 변경승인, 성능시험, 검정 또는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작·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13의2. 제11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변경승인, 성능시험, 검정 또는 인정을 받은 자

13의3. 제110조제1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14.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해체한 자

15. 제115조제6항을 위반하여 출입검사·보고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6. 제11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1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131조(외국인에 대한 벌칙적용의 특례) ①외국인에 대하여 제127조 및 제1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의로 우리나라의 영해 안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해당 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의 범위에 관하여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외국인에 대한 사법절차에 관하여는 동법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개정 2017. 10. 31.>

1.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의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한 자
2. 삭제<2011. 6. 15.>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1. 6. 15., 2014. 3. 24., 2017. 10. 31., 2020. 3. 24.>

1.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공간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
2.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의2.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2의3.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2의4.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4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선박에 설치한 자
4. 제4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료유공급서의 사본 및 연료유견본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연료유공급서 사본 및 연료유견본을 제공한 자
5. 제6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제조치의 협조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7. 삭제<2019. 12. 3.>
8. 제7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환경관리업자의 권리·의무 승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9. 삭제<2019. 12. 3.>
10. 삭제<2024. 1. 2.>

11. 삭제 <2024. 1. 2.>

12. 삭제 <2024. 1. 2.>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1. 제4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유지·작동한 자
2. 제4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체 또는 단체 외의 자에게 인도한 자
3. 제4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각이 금지된 물질을 선박 안에서 소각한 자
4. 제4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각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유지·작동한 자
5. 제4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각이 금지된 해역에서 주기관·보조기관 또는 보일러를 사용하여 물질을 소각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9. 12. 29., 2011. 6. 15., 2016. 12. 27., 2017. 10. 31., 2020. 3. 24., 2022. 10. 18., 2025. 12. 30.>

1.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배출물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받은 배출물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자
- 1의2.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장소, 배출량 등을 그 선박의 기관일지에 기재하지 아니한 자
- 1의3.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유저장을 위한 용기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인받은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3. 제30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기록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기재한 자
- 3의2. 제3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4. 제31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검인받은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및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및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2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보유하지 아니한 자
6. 제32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 6의2. 제32조제3항 또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 6의3. 제32조제4항 또는 제36조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 등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을 지휘·감독하게 하지 아니한 자
- 6의4.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검인받은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자

- 6의5.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작업에 관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또는 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 6의6.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작업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6의7.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6의8. 제41조의3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또는 선박에너지 효율적합확인서를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 6의9. 제41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6의10. 제4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를 5년 이상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 6의11. 제42조제4항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설비의 목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자
- 6의12. 제42조제5항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자
- 6의13.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관일지를 기재하지 아니한 자
7. 제4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관일지를 기재하지 아니한 자
8. 제4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관일지를 1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 8의2. 제44조제5항에 따른 연료유전환절차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9. 제4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료유공급서 또는 그 사본을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10. 제4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료유건본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11. 제4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증기 배출제어장치의 작동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 11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검인 받은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자
12. 제5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을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13. 제7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자
14. 제7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
15. 삭제<2019. 12. 3.>
- 15의2.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오염물질 방제업무를 지연하거나 방제의무자 등의 방제조치를 방해한 자
16. 삭제<2019. 12. 3.>
17. 삭제<2019. 12. 3.>
- 17의2. 제76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8.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9. 삭제 <2020. 3. 24.>

제13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132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18.>

[전문개정 2009. 12. 29.]

부칙 <제8260호, 2007. 1. 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110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40조 및 제5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선박 유해방오시스템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해양오염방지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공단의 설립준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하 “방제조합”이라 한다)의 해산과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설립추진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정부·방제조합 및 학계 등의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하며,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된다.

③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설립위원회의 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 및 재산의 인계) ①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설립 등기 후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그 사무와 재산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와 재산의 인계가 끝난 때에 해산 또는 해임·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설립비용) 방제조합의 해산 및 공단의 설립비용은 공단이 부담한다.

제6조 (공단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설립된 방제조합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이 법에 따라 설립될 공단이 승계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방제조합은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방제조합의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 관계에 있어서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이를 공단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방제조합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그에 갈음하여 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방제조합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이 이를 포괄하여 승계한다. 이 경우 공단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포괄하여 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방제조합의 명의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의 명의로 본다.

제7조 (임·직원에 관한 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방제조합의 이사장·이사 및 감사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사의 경우 잔여 임기와 그 업무수행능력을 감안하여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직위에 상응하는 직무를 부여할 수 있다.

②제9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단의 최초 이사장·감사 및 이사는 설립위원회의 제청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방제조합의 직원은 공단의 직원으로 본다.

제8조 (유해방오도로 등의 사용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양 시설에 유해방오도로 또는 유해방오시스템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0조 및 제53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조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건조된 선박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거(入渠)하여 검사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9조 (바다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등에 대한 해역이용협약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바다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바다골재채취의 허가 및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위하여 최초로 처분기관에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해역이용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 규정은 동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한 면허등을 받기 위하여 최초로 처분기관에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2조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되어 시행 중인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은 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5의 규정에 따라 수립되어 시행 중인 환경관리해역관리기본계획은 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환경관리기본계획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기름 및 위험·유해물질오염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수립되어 시행 중인 기름오염대비·대응을 위한 국가긴급방제계획은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국가긴급방제계획으로 본다.

제13조 (환경보전해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보전해역은 이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전해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관리해역은 이 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전해역 등에서 행하여진 행위제한은 이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전해역 또는 특별관리해역에서 행위제한 또는 조치 등을 행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해역이용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8의 규정에 따른 해역이용협약은 이 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해역이용협약을 행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설치된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해양오염영향조사평가위원회 및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위원회로 본다. 이 경우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해양오염영향조사평가위원회 및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위원회별 소관사항은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51조·제52조의12 및 제63조의 구분에 따른다.

제16조 (기름오염방지설비 등을 설치한 선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6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및 제23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름오염방지설비·선체·유해액체물질방지설비·화물창·폐기물오염방지설비 및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한 선박은 이 법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및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오염방지설비·기름오염방지설비·선체·유해액체물질방지설비·화물창 및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교부한 해양오염방지증서 및 임시해양오염방지증서는 이 법 제49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및 임시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로 본다.

제17조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오존층파괴물질에 염화불화탄화수소가 포함된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까지는 당해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선박에 설치할 수 있다.

②2006년 6월 29일 전에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설치한 선박은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설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 (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디젤기관은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이 조에서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작동할 수 있다.

1. 2006년 6월 29일 전에 건조된 선박에 설치된 제43조제1항제1호의 디젤기관(2006년 6월 29일 이후 제작된 디젤기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작동하도록 개조된 디젤기관 및 연속 최대출력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도록 개조된 디젤기관을 제외한다)
2. 2000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에 설치된 제43조제1항제2호의 디젤기관(2000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디젤기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작동하도록 개조된 디젤기관 및 연속

최대출력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도록 개조된 디젤기관을 제외한다)

제19조 (유증기 배출제어장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6월 29일 전에 기름·유해액체물질을 선박에 싣기 위한 시설의 설치를 시작하였거나 동 설치를 완료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2009년 5월 19일까지는 당해 해양시설에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 (분담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 4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은 이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제분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4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방제선등의 배치를 위탁하거나 방제대행자를 지정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기간 또는 지정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 (폐기물해양배출업 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으로 등록한 자는 이 법 제7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방제업으로 등록한 자는 이 법 제7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유창청소업으로 등록한 자는 이 법 제7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유창청소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22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서는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른다.

제2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전단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②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2 또는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을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로 한다.

③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7. 4. 27.>

제2조제14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8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76조제1항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3조의5제1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제43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4조제1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제49조 내지 제52조”로 한다.

④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⑤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5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6조의3”을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로 하고, 같은 표 제96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을 “「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방제분담금”으로 한다.

⑥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3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설비·자재의 형식승인”을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측정기기 등의 형식승인 등”으로 한다.

⑦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2 또는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을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로 한다.

1.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⑧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7. 4. 11.>

제80조제1항제2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0호의 해양시설”을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따른 해양시설”로 한다.

⑨수질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단서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을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로 한다.

⑩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 및 제20조”로 한다.

⑪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⑫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해양오염방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해양환경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위원회”로 하고,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해양환경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위원회”로 하며,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해양환경관리위원회”로 한다.

⑬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동법 제5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공단 이 동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으로, “해양오염방제용”을 “해양오염방제 및 해양환

경관리용”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3제2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3제3호 및 제6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6호”로 한다.

⑭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201호 근거법률란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제1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로 하고, 동표의 제202호 근거법률란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제2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로 한다.

⑮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를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로 한다.

1^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1& 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7. 4. 11.>

제2조제2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0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3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2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371호,2007. 4. 11.> (폐기물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 、 <생략> 、 、 、 부칙 제9조제4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0일부터 、 、 、 <생략> 、 、 、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4! 생략

4@ 법률 제826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6조”를 “제25조”로 한다.

4# 내지4^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8377호,2007. 4. 11.> (수산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15조제24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2# 생략

2\$ 법률 제826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3조제8항 중 “ 제82조제1항중 ”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해양시설 “ ” 을 “ 제80조제1항제2호 중 ”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0호의 해양시설"로 한다

제16조 생략

부칙 <제8379호,2007. 4. 11.> (항만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10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법률 제826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 중 “ 「항만법」 제22조 ” 를 “ 「항만법」 제23조 ” 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제8380호,2007. 4. 11.> (해상교통안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법률 제826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3조제17항 중 “ 제2조제1호의2중 ”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0호 “ ” 를 “ 제2조제2호 중 ”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0호 “ ” 로, “ ”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 “ ” 를 “ ”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 “ ” 로 하고, “ 제49조의2제1항제2호중 ”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3호 “ ” 를 “ 제61조제1항제2호 중 ”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3호 “ ” 로, “ ”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6호 “ ” 를 “ ”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7호 “ ” 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8404호, 2007. 4. 27.> (대기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 、 <생략> 、 、 、 부칙 제13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0일부터 、 、 、 <생략> 、 、 、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2\$ 생략

2% 법률 제826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2 ”를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을 “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제1항 ”으로 한다.

제47조제3항 단서 중 “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을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으로, “ 동법 제28조의2제1항 ”을 “ 같은 법 제44조제1항 ”으로 한다.

부칙 제23조제3항 중 “ 제2조제11호의2중 ”을 “ 제2조제14호 중 ”으로, “ 제43조제1항중 ”을 “ 제76조제1항 중 ”으로 한다.

2^ 부터3)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8788호, 2007. 12. 21.> (선박평형수 (선박평형수) 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란 「선박평형수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평형수를 말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나목·다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 밸러스트수 ”를 각각 “ 선박평형수 ”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 밸러스트수 ”를 각각 “ 선박평형수 ”로 한다.

제129조제2항제5호 중 “ 밸러스트수 ”를 “ 선박평형수 ”로 한다.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 、 <생략> 、 、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

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92> 까지 생략

<693>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4호·제16호·제17호,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4항, 제1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4항, 제22조제1항제1호가목·나목 및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나목,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항제3호,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제5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제3항,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2항, 제29조, 제30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전단, 제33조제2항,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제38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제3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 및 제2항, 제42조제3항 후단,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44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45조제2항 단서 및 제5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및 제4항, 제4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4항, 제48조제3호, 제49조제1항 및 제2항, 제50조제1항 및 제3항,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및 제2항,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5조제1항, 제56조제2항 및 제4항, 제61조제1항 전단, 제62조제2항, 제63조제2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3항,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항,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3조, 제74조제3항, 제75조제2항, 제76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2항, 제77조제4항, 제82조제2항, 제84조제3항 및 제5항, 제85조제2항·제3항 및 제5항, 제86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2항, 제88조제2호, 제89조제2항, 제95조제2항 전단, 제11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및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1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3항, 제112조제3항 및 제4항, 제113조제3항, 제115조제6항, 제121조 단서, 제122조제1항 및 제125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제6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8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2항 전단·후단,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전단·후단, 제10조 전단,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8조제2항 전단·후단 및 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제4항, 제20조제1항 전단,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제1항 전단, 제27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 제42조제3항 전단, 제4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제3호, 제47조제1항 및 제3항 본문, 제49조제1항 및 제2항, 제50조제1항

및 제2항, 제51조제1항 및 제2항, 제52조제1항 및 제2항, 제5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4조제1항 및 제2항, 제55조제1항 및 제3항, 제56조제2항, 제58조제1항 및 제2항, 제59조제1항, 제6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61조제1항 후단, 제62조제2항,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1항 및 제3항, 제73조, 제74조제3항,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6조제1항 전단, 제7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항,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제86조제1항 전단,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1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4항, 제92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본문, 제9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9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및 제3항 전단·후단, 제98조제2항 전단, 제99조제3항 전단·후단 및 제4항 전단, 제104조제3항 후단, 제106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제107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108조제1항 및 제2항,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및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제3항,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전단·후단, 제115조제1항 및 제6항, 제116조제1항, 제1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2조제3항 후단, 제132조제3항제2호, 제1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69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037호, 2008. 3. 28.> (환경영향평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 까지 생략

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 단서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2@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9454호,2009. 2. 6.> (해양수산물발전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61조제2항 및 제77조제4항 중 “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위원회 ” 를 각각 “ 「해양수산물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물발전위원회 ” 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제9626호,2009. 4. 22.> (수산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 ” 을 “ 「수산업법」 제76조 ” 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 <제9773호,2009. 6. 9.> (항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2% 까지 생략

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 중 “ 「항만법」 제23조 ” 를 “ 「항만법」 제20조 ” 로 한다.

2&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9872호,2009. 12.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19호, 2010. 3. 31.> (지방세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 중 “ 「지방세법」 ”을 “ 「지방세기본법」 ”으로 한다.

<60> 및 <61>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0272호, 2010. 4. 1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4> 까지 생략

<7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나목 중 “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 ”을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제35조 ”로 한다.

제8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의 허가 및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는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제8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 「공유수면관리법」 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의 허가 또는 「공유수면매립법」 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를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또는 매립면허 ”로 한다.

제8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8호에 따른 흙·돌을 공유수면에 버리는 행위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행위 중 해양자원의 이용·개발

제14조 생략

부칙 <제10803호, 2011. 6. 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제1항 및 제4항(제1항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공포 후 해당 선박의 첫 번째 중간검사 또는 정기검사 날부터 시

행하고, 제32조의2제2항·제3항 및 제4항(제1항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10조의2, 제112조, 제122조, 제128조제17호의2, 제129조제2항제9호의2 및 같은 항 제1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역이용영향평가에 대한 적용례) 제8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유수면의 준설을 위하여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처분기관에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종합계획으로 보고, 종전의 환경관리기본계획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역별 관리계획으로 본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892호, 2011. 7. 21.> (환경영향평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3항 ” 을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 로 한다.

3) 부터3%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0893호, 2011. 7. 21.>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의 규정 ” 을 “ 「환경정책기본법」 제13조 ” 로 한다.

2^ 부터3#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0911호, 2011. 7. 25.> (원자력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 「원자력법」 ”을 “ 「원자력안전법」 ”으로 한다.

1^ 및 1&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1479호, 2012. 6.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면제 대상인 해양환경측정기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작·제조 또는 수입하는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대상설비 및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하는 자재·약제부터 적용한다.

제3조(피예인선에 대한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비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피예인선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검인을 받은 후 해당 피예인선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11597호, 2012. 1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제1항제3호, 제115조제3항 및 제1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2013년 7월 1일 이후에 용골이 거치되거나 그와 동등한 건조단계에 착수한 선박을 말한다), 2015년 7월 1일 이후에 선박의 소유자에게 인도되는 선박 또는 2013년 1월 1일 이후에 개조를 하려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박 중 제4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조 또는 개조하는 선박을 제외한 선박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대기오염방지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받을 때까지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에너지효율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4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는 건조하거나 개조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기 전까지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에너지효율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4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박 중 제1항에 따른 선박을 제외한 선박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대기오염방지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받을

때에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에너지효율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7>까지 생략

<668>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2조제1항제1호가목, 나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항 제3호가목, 제3호나목,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2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5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항, 제2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9조, 제30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전단, 제32조의2제1항, 제2항, 제4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1항, 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 제2항,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3호,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의3제1항, 제2항, 제42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4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44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4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7조의2제2항, 제48조제3호, 제49조제1항, 제2항, 제50조제1항, 제3항,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2항,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5조제1항, 제56조제2항, 제4항, 제61조제1항 전단, 제62조제2항, 제63조제2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3항,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70조의2제2항,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3조, 제74조제3항, 제75조제2항, 제7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6조의2제2항, 제77조제4항, 제82조제2항, 제83조의2제2항, 제4항, 제84조제3항, 제6항, 제8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8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8조제2호, 제89조제2항, 제95조제2항 전단, 제108조제1항 단서, 제11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1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12조제3항, 제4항, 제113조제3항, 제115조제7항, 제119조

의2제1항제2호, 제121조 단서, 제122조제1항 및 제125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2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0조 전단,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8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20조제1항 전단, 제2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제1항 전단, 제27조제3항, 제32조의2제1항·제3항, 제33조제1항, 제3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3항 전단, 제4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제3호,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7조의2제1항, 제49조제1항·제2항, 제50조제1항·제2항, 제51조제1항·제2항, 제52조제1항·제2항, 제5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4조제1항·제2항, 제54조의2제1항·제2항, 제55조제1항·제3항, 제56조제2항,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1항,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1조제1항 후단, 제62조제2항,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의2제1항, 제72조제1항·제3항, 제73조, 제74조제3항,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6조제1항 전단, 제76조의2제1항, 제7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9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9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95호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98조제2항 전단, 제99조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04조제3항 후단, 제10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0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0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15조제1항·제2항·제7항, 제116조제1항, 제1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2조제3항 후단, 제12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2조제3항제2호 및 제133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5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66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300호, 2014. 1. 21.>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을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로 한다.

부칙 <제12549호, 2014. 3. 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62호, 2014. 5.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71조제1호(제7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1조제1호, 제87조제1호 및 제10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844호, 2014. 11. 1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1>까지 생략

<24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제35조제1항 본문, 제61조제1항 전단·후단, 제62조제1항·제2항, 제6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6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8조제1항·제3항,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1항, 제73조, 제74조제3항,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3조의2제2항, 제108조제1항 단서, 제110조제4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2조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5조제3항·제4항·제7항, 제116조제1항, 제1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2조제3항 후단, 제123조제1항 및 제133조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7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2조제2항·제4항, 제73조, 제74조제3항, 제75조제2항, 제108조제1항 단서, 제110조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2조제3항·제4항, 제113조제3항, 제115조제7항 및 제122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단서 중 “해양경찰청합정”을 “국민안전처합정”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전단, 제63조제2항, 제110조제4항 본문·단서 및 제111조제1항 본문·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해양수산부령”을 “총리령”으로, “보고하여야”를 “통보하여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83조의2제2항 중 “해양경찰청 소속”을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한다.

제114조제1항 및 제117조 중 “해역관리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해역관리청”으로 한다.

제114조제3항 중 “해역관리청·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해역관리청”으로 한다.

<24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084호, 2015. 1. 28.> (산업표준화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후단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시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고시된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부칙 <제13383호, 2015. 6. 2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58>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4476호, 2016. 12. 27.> (지방세징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1>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516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8호·제9호, 제31조제1항, 제33조, 제35조제1항, 제75조제1항제8호, 제89조제1항제2호의2, 제105조, 제126조제1호, 제127조제1호·제2호, 제128조제1호 및 제132조제4항제1호·제1호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공유재산 특례의 유효기간 등) ① 제10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10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제10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단이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국·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 기간의 범위에서 효력을 가진다.

제3조(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평가대행자가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기물 배출률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

은 배출물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배출물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해양환경관리업자의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75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해양환경관리업자가 종전의 제75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국·공유재산 무상대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05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공단이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 기간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532호, 2017. 1. 17.> (물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및 제81조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81>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605호, 2017. 3. 21.>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0호가목 및 제3조제1항제2호 중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을 각각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으로 한다.

부칙 <제14747호, 2017. 3.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9>까지 생략

<25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제35조제1항 본문, 제61조제1항 전단·후단, 제62조제1항, 제6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6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8조제1항·제3항,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1항, 제73조, 제74조제3항,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3조의2제2항, 제108조제1항 단서, 제110조제4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2조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5조제3항·제4항·제7항, 제116조제1항, 제1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2조제3항 후단, 제123조제1항 및 제133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70조제1항제3호, 제72조제4항, 제75조제2항, 제108조제1항 단서, 제110조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2조제4항, 제113조제3항 및 제122조제1항 중 “총리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합정”을 “해양경찰청합정”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전단 및 제111조제1항 본문·단서 중 “총리령이”를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총리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통보하여야”를 “보고하여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63조제2항, 제110조제4항 본문·단서, 제1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70조제2항·제3항, 제72조제2항, 제73조, 제74조제3항, 제110조제5항, 제112조제3항 및 제115조제7항 중 “총리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를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83조의2제2항 중 “국민안전처 소속”을 “해양경찰청 소속”으로 한다.

제114조제1항 및 제11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해역관리청”을 각각 “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4조제3항 중 “ 국민안전처장관、해역관리청 ” 을 “ 해역관리청、해양경찰청장 ” 으로 한다.

<25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011호,2017. 10. 31.> (항만운송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선박급유업자 ” 를 “ 선박연료공급업자 ”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 선박급유업 ” 을 “ 선박연료공급업 ”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선박급유업자 ” 를 각각 “ 선박연료공급업자 ” 로 한다.

제115조제2항 중 “ 선박급유업자 ” 를 “ 선박연료공급업자 ” 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5012호,2017. 10.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등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또는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양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부터 적용한다.

제4조(방제분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과하는 방제분담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부과된 가산금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공단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이 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공단의 행위나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의 행위나 해양환경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해양환경공단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 단서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②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16160호, 2018. 12. 3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선박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 또는 동법”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⑩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6215호, 2019. 1. 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20호, 2019. 8.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68호, 2019. 8. 27.> (양식산업발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1항제3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

<61>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6699호, 2019. 12.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0. 3. 24.>

제18조제1항제2호 중 “오염물질”을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8조제5항 중 “오염물질의 수거·처리방법 및 오염된 퇴적물의 수거방법”을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의 수거·처리방법”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을 하는 자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을 고립시키는 방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해양 지중저장하는 행위

제2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오염물질”을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수거·처리 및 조사·측정활동”을 “제2항에 따른 조사·측정활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70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0조의2를 삭제한다.

제72조제1항 중 “ 폐기물의 해양투기, 오염물질의 방제, 오염물질의 청소·수거, 부유·침적 된 폐기물의 수거 및 퇴적된 오염물질의 준설·수거 ” 를 “ 오염물질의 방제 및 오염물질의 청소·수거 ” 로,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 ” 을 “ 해양경찰청장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1711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제5항 중 “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 을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 으로, “ 처리실적서·처리대장, 오염물질수거확인증 및 폐기물인계·인수서의 ” 를 “ 처리실적서·처리대장 및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의 ” 로 한다.

제73조 중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 ” 을 “ 해양경찰청장 ” 으로 한다.

제74조제3항 중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 ” 을 “ 해양경찰청장 ” 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본문 중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 ” 을 “ 해양경찰청장 ” 으로, “ 영업정지(운반선 또는 저장시설만의 사용정지를 포함한다) ” 를 “ 영업정지 ” 로 한다.

제76조 및 제7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15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19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해상에 배출한 자

제12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132조제2항제7호·제9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17007호, 2020. 2. 18.>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평가할 수 있다.

제3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7110호, 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2, 제48조 및 제129조제1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6699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조제5항 중 “ 제72조제4항 ” 을 “ 법률 제1711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제5항 ” 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066호, 2021. 4. 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02호, 2022. 10. 18.>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를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 으로 한다.

부칙 <제19013호, 2022. 10.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4부터 제41조의6까지, 제54조의2, 제56조, 제58조, 제112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 중인 연료유의 건본채취 장소의 지정 및 설비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일 이후 건조된 선박(2022년 4월 1일 이후 용골이 거치된 선박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2년 4월 1일 이전 건조된 선박은 2023년 4월 1일 이후 해당 선박의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에너지효율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하는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779호,2023. 10. 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10호,2024. 1. 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장(제84조부터 제95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1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20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24조 중 “ 제91조제2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 공단 ”을 “ 공단 ”으로 한다.

제126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28조제13호 중 “ 제82조제1항 및 제89조제1항의 규정 ”을 “ 제82조제1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9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6호 중 “ 제1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 ”을 “ 제118조제1항 및 제2항 ”으로 한다.

제132조제2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 생략

부칙 <제20604호,2024. 12.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65호,2025. 10. 1.>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

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5>까지 생략

<526>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 중 “ 기획재정부장관 ” 을 “ 재정경제부장관 ” 으로 한다.

제112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제113조제2항 전단 중 “ 환경부장관 ” 을 각각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으로 한다.

<52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283호, 2025. 12. 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16호, 2026. 2.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78호, 2026. 6. 30.,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총괄, 법령개정사항 - 해양환경정책과) 051 - 773 - 5289, 5290

해양수산부 (해양오염방제 - 해양환경정책과) 051 - 773 - 5283, 5293

해양수산부 (선박규제 - 해사산업기술과) 051 - 773 - 5834, 583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7. 9. 19.>

제3조 삭제 <2017. 9. 19.>

제4조(해역의 범위)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이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말한다. <개정 2019. 7. 2.>

1.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에 따른 내수
2.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이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 해역

제5조 삭제 <2017. 9. 19.>

제2장 해양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조치

제6조 삭제 <2017. 9. 19.>

제7조(정도관리 대상기관)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12. 1.>

1. 법 제9조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을 운영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을 측정·분석하는 기관이나 단체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5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라 지정된 해양오염퇴적물 조사기관 및 해양배출 검사기관
3.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4.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자
5.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

6. 「어장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망을 운영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을 측정·분석하는 기관이나 단체
7. 「소금산업 진흥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바닷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을 측정·분석하는 기관이나 단체
8. 그 밖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의 예산으로 해양환경을 측정·분석하는 기관이나 단체

제7조의2(정도관리계획 수립기관)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환경종합조사 실시기관”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기관”이란 각각 제7조제1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7. 9. 19.]

제8조(측정·분석능력인증의 취소) 법 제1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란 측정·분석능력인증 취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측정·분석 실적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10. 22.>

제9조(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이하 “환경관리해역”이라 한다)을 지정, 해제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및 해당 해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이하 “지역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공청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에 관하여 고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지정, 해제 또는 변경되는 환경관리해역의 명칭
2. 지정, 해제 또는 변경되는 환경관리해역의 위치·면적 및 범위
3.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의 연월일

[본조신설 2019. 7. 2.]

제10조(환경관리해역에서의 시설 설치 제한) ① 삭제 <2019. 7. 2.>

② 삭제 <2019. 7. 2.>

③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12. 31., 2010. 10. 14., 2017. 1. 17., 2019. 7. 2.>

1. 1일 폐수배출량이 2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해당 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공공 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거나 그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두、방파제、교량、수문 또는 건축물

④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관리해역(이하 “특별관리해역”이라 한다) 안에서 설치 또는 변경이 제한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개정 2009. 12. 31., 2010. 10. 14., 2017. 1. 17., 2019. 7. 2., 2020. 8. 26., 2023. 1. 10.>

1. 1일 폐수배출량이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해당 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공공 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거나 그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두、방파제、교량、수문 또는 건축물

3.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면허어업을 위한 시설

4.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면허 양식업을 위한 시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환경관리해역에서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제한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제한의 내용 및 기간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7. 2.>

[제목개정 2019. 7. 2.]

제11조(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오염물질의 총량규제(이하 “오염물질 총량규제”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 오염물질 총량규제를 실시하는 해역(이하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이라 한다)을 지정、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9. 7. 2.>

②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을 지정할 때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시된 수계구간 및 그 영향을 주는 유역은 제외한다.<개정 2019. 7. 2.>

제12조(오염물질 총량규제 항목 등) ① 오염물질 총량규제의 항목은 다음 각 호의 항목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환경기준, 해역의 이용현황 및 수질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의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9. 19., 2019. 7. 2.>

1. 화학적 산소요구량
2. 질소
3. 인

4. 중금속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항목에 대한 오염물질 총량규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총량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총량관리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당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7. 2.>

1. 오염물질 총량규제 항목 및 목표수질
2. 오염원 조사 및 오염부하량 산정방법
3. 유역별, 행정구역별 및 오염원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4.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
5. 제4항에 따라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같다)가 수립하는 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승인기준
6.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한 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총량관리시행계획의 변경 시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

③ 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량관리기본계획을 변경(제2항제6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7. 2.>

1. 지역개발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2. 관할 지방자치단체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3. 지역 및 해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삭감계획
4.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그 삭감계획

④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제3항에 따른 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총량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총량관리시행계획을 변경(제2항제6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9. 7. 2.>

1.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수립한 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것
2. 시장·군수는 수립한 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총량관리기본계획과 제4항에 따른 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총량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등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7. 2.>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오염물질 총량규제를 위한 항목과 목표수질의 결정 및 조정, 오염물질 총량규제의 시행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7. 2.>

제13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총량관리기본방침에서 정한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적용받는 시설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 17., 2018. 1. 16., 2019. 7. 2., 2025. 10. 1.>

1.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이 적용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2.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이 적용되는 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한정한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이 적용되는 정화시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총량관리시행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7. 2.,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 요청을 받은 경우 최종방류구별·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④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총량관리기본방침에서 정한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의 적용을 받는 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최종방류구별·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2019. 7. 2.>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 2025. 10. 1.>

⑥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는 「물환경보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하수도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에게 처리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7. 2.>

⑧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제4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이나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또는 제7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개선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7. 2.>

⑨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방법 및 절차와 조치명령의 이행확인 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4조(오염물질 총량관리 이행평가 등) ①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는 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 이행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7. 2.>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오염물질 총량규제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7. 2.>

③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원의 증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 총량규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7. 2.>

제15조(재정상의 지원 등) ① 국가는 오염물질 총량규제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에 대하여 오염물질 총량규제에 따른 시설개선 등 필요한 비용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보다 우선하여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2.>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총량관리기본계획 또는 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승인,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 2. 29., 2011. 11. 16., 2013. 3. 23., 2019. 7. 2.>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발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4.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을 위반하거나 오염물질 총량규제를 시행하는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제14조제2항에 따른 요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재정지원의 중단이나 삭감,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7. 2.>

제16조(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등의 내용)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관리해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11. 9. 22., 2013. 3. 23., 2021. 1. 5.>

1.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 이행 실태의 평가, 관리
2. 해역의 수질오염 총량 관리에 관한 사항

3. 해역의 수질·밑바닥 퇴적물(저질) 및 생태계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역의 환경개선 투자계획 수립
 5. 퇴적물 준설, 인공서식지 조성 등 해역의 환경용량 확대에 관한 사항
 6. 해양오염방지와 해양환경개선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
 7. 해양환경보전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목개정 2011. 9. 22.]

제17조(사업관리단의 구성)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 학계, 연구기관 등 해양환경관리 관련 전문가 등

제18조 삭제 <2009. 7. 7.>

제19조 삭제 <2009. 7. 7.>

제20조 삭제 <2009. 7. 7.>

제21조 삭제 <2009. 7. 7.>

제22조 삭제 <2009. 7. 7.>

제23조 삭제 <2009. 7. 7.>

제24조(해역관리청의 해양환경개선조치)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해역관리청이 할 수 있는 해양환경개선조치의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1., 2021. 1. 5.>

1. 부유차단막 또는 수질오염 방지막의 설치
2. 해양공간에서의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의 수거·처리
3. 삭제 <2020. 12. 1.>

② 해역관리청은 공공폐수처리시설, 분뇨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1. 17.>

제24조의2(해양수산부장관의 해양환경개선조치)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서 “해양환경개선조치의 대상 해역 또는 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지사의 관할에 속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양환경개선조치의 대상 해역 또는 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지사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2. 재해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해양환경개선조치를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2. 11. 27.]

[제목개정 2013. 3. 23.]

제25조(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 해양배출행위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폐기물해양배출량(세제곱미터) × 단위당 부과금액 × 부과계수

② 제1항의 산식에서 폐기물해양배출량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리실적서를 근거로 산정한다. <개정 2020. 12. 1.>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의 단위당 부과금액과 종류별 부과계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 9. 22.>

[전문개정 2009. 12. 31.]

제25조의2(선박 등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 ①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이란 별표 3의2와 같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해양배출행위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4. 30.>

오염물질의 해양배출량(리터) × 단위당 부과금액 × 부과계수

③ 제2항의 산식에서 오염물질의 해양배출량은 배출 전에 선적 또는 저장한 양에서 배출 후 이적 또는 잔존한 양(선박 연료유의 경우에는 선적한 양에서 선박의 운항 중 사용량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값으로 산정한다. 다만, 침몰·파손 등으로 잔존한 양을 알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유체역학적 원리 등을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3. 4.>

④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해역·수역 밖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같은 해역·수역 안으로 유입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1. 9. 22.>

⑤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단위당 부과금액과 종류별 부과계수는 별표 3의3과 같다. <개정 2011. 9. 22.>

⑥ 삭제 <2011. 9. 22.>

[본조신설 2009. 12. 31.]

제26조(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부과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기 또는 산정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3. 3. 23.>

1. 법 제19조제1항제1호: 매분기별

2. 법 제19조제1항제2호: 배출행위 발생 시

② 삭제 <2009. 12. 31.>

③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달의 마지막 날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해양배출업이 분기 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된 것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분기의 부담금에 대한 납부고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분기의 부담금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09. 12. 31.]

제27조(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9. 22.,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분할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1.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분할납부허가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분할납부허가를 취소하고 분할납부와 관계되는 금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납부의무자에게 그 뜻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2. 17.>

1. 분할납부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그 분할납부기한까지 그 분할납부와 관계되는 금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8조(분할납부금액의 산정 등) ① 제27조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횟수는 3회로 한정하며, 분할납부의 첫 회분의 납부기한은 해당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한 달의 마지막 날로 한다. <개정 2009. 12. 31.>

② 제1항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금액은 월별로 동일하게 나누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회의 납부기한은 매월 마지막 날로 한다.<신설 2009. 12. 31., 2025. 3. 4.>

③ 분할납부의무자는 분할납부금액의 총액에서 바로 전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금액 또는 분할납부금액의 합계액을 뺀 잔액을 기초로 하여 바로 전회의 분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각 회분의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산한 이자금액을 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납부할 금액에 연 100분의 6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다.<개정 2009. 12. 31.>

제29조(부담금의 조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부담금의 부과대상 또는 산정방법이 잘못 적용된 경우

2. 분할납부금액 및 그 이자금액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부담금액이 잘못 부과된 경우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조정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면 그 금액·납부 기한·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써 알려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30조(부담금의 조정신청) ①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거나 분할납부허가를 받은 자는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거나 분할납부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그 신청인 또는 새로운 납부대상자에게 알려야 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제29조제2항에 따라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1조 삭제 <2018. 4. 30.>

제32조(가산금) ①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 4. 30.>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6. 30., 2018. 4. 30.>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부담금”은 “가산금”으로,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는 “가산금분할납부신청서”로 본다.<신설 2016. 6. 30.>

제32조의2(독촉)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독촉하려는 경우 내야 할 부담금·가산금 및 그 납부기한·장소를 납부의무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4. 30.]

제33조(부담금 관련사업) ① 법 제21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친환경 선박의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반조성 사업
2. 국내외 친환경 선박에 대한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업
3. 선박에너지효율 향상에 관한 사업
4. 친환경 선박의 매입(買入)·개조, 친환경 선박에 사용되는 기자재의 설치·교체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21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해양오염 저감대책의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업
2.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활동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사업

[전문개정 2017. 6. 27.]

제3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제34조(해양공간)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해양공간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제35조 삭제 <2020. 12. 1.>

제35조의2 삭제 <2020. 12. 1.>

제36조 삭제 <2020. 12. 1.>

제37조(조사·측정활동) ① 해역관리청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의 종류별·오염원별 배출량 또는 유입량을 조사·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19., 2020. 12. 1.>

② 해역관리청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측정활동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찰 출입제한구역의 출입,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해역관리청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측정활동을 매년 실시하고, 시·도지사가 해역관리청인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3. 11. 16.>

제38조 삭제 <2020. 12. 1.>

제39조(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업무내용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각각 별표 5에 따른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그 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12. 29.>

②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자의 업무내용 및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6. 27., 2018. 4. 30., 2020. 12. 29.>

1. 폐기물기록부와 기름기록부(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반하는 선박의 경우 유해액체물질 기록부를 포함한다)의 기록 및 보관
2.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의 지휘·감독
3.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정비 및 작동상태의 점검
4.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정비 및 점검
5.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자재 및 약제의 관리

6. 법 제63조제1항 및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이 있는 경우 신속한 신고 및 필요한 응급조치
 7. 법 제121조에 따른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훈련의 이수 및 해당 선박의 승무원에 대한 교육의 실시(해양오염방지관리인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해당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사고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
- ③ 법 제3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별표 5에 따른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을 말한다.<신설 2026. 6. 30.>
- [제목개정 2018. 4. 30.]

- 제40조(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업무내용 등)** ① 법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각각 별표 5에 따른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그 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12. 29.>
- ② 법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자의 업무내용 및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6. 27., 2018. 4. 30., 2020. 12. 29.>
1.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의 기록 및 보관
 2. 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의 지휘·감독
 3.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정비 및 작동상태의 점검
 4.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자재 및 약제의 관리
 5. 법 제63조제1항 및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이 있는 경우 신속한 신고 및 필요한 응급조치
 6. 법 제121조에 따른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훈련의 이수 및 해당 시설의 직원에 대한 교육의 실시(해양오염방지관리인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해당 시설로부터의 오염사고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
- ③ 법 제3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별표 5에 따른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을 말한다.<신설 2026. 6. 30.>
- [제목개정 2018. 4. 30.]

- 제40조의2(안전진단 전문기관)** 법 제36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 1. 16., 2018. 4. 30., 2020. 12. 29.>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11 제3호에 따른 안전진단 분야별 장비를 갖춘 기관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7 제3호에 따른 장비를 갖춘 기관
- [본조신설 2014. 9. 24.]

- 제40조의3(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등)** ①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이하 “오염물질저장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1.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2.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위치도(설치 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한다)
3.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운영계획서

②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운영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1.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
2. 변경하려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해양관리청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4. 16.]

제41조(측정·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해양수산부 장관이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3. 27.>

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의 측정자료
2.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과 그 이행에 관한 정보
3.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 배출경로 및 배출량에 관한 자료
4.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영향조사에 관한 자료
5. 잔류성오염물질을 취급하는 업종·업체에 대한 정보

제4장 해양에서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제42조(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 4. 18.>

1. 배출규제해역: 0.1퍼센트(무게 퍼센트)
2. 그 밖의 해역

가. 경유: 0.5퍼센트(무게 퍼센트). 다만,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0.05퍼센트(무게 퍼센트)

나. 중유: 0.5퍼센트(무게 퍼센트)

[전문개정 2020. 12. 29.]

제43조(연료유의 품질기준)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료유의 품질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품질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12. 29.>

1. 석유를 정제하는 방법에 따라 제조된 연료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
 - 가. 탄화수소 혼합물(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첨가제를 포함한다)일 것
 - 나. 무기산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 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첨가제 또는 화학폐기물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2. 제1호 외의 방법에 따라 제조된 연료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
 - 가. 선박의 기관을 작동할 때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법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나. 혼합되는 원물질에 무기산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 다. 선박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기계의 성능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 라. 인체에 해롭지 아니할 것
 - 마. 대기오염을 가중시키지 아니할 것

제5장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치

제44조(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국가긴급방제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9. 22.>

1. 오염물질의 배출에 대비한 사전 예방 계획
 - 가. 국가 방제체제 및 대응조직의 구성과 운영
 - 나. 해양오염 대비·대응을 위한 관계 기관 등의 임무와 역할
 - 다. 방제장비, 자재 및 약제의 확보
 - 라. 해양오염 대비·대응을 위한 교육과 훈련
 - 마. 인접 국가 간 방제지원·협력체제의 구성과 운영
 - 바. 방제기술 전문가의 자문 및 지원
 - 사. 해양오염 방제를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
2. 오염물질 배출 시 방제조치 계획
 - 가. 국가가 행하는 긴급 방제조치의 범위
 - 나. 오염현장 상황조사, 방제방법 결정, 사고해역 지휘·통제 등 방제 실행
 - 다. 방제장비, 자재 및 약제의 긴급 동원 및 지원
 - 라. 해상안전의 확보와 위험방지 조치
 - 마. 해양오염사고 영향과 피해조사 등 사후관리
 - 바. 방제평가 및 방제종료의 기준 등 방제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경찰청장은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지역별 실정에 맞는 지역 긴급방제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45조(방제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의 장(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이라 한다)은 해양경찰청장이 되고, 그 구성원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 기관의 장이 파견한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본부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방제대책본부에 근무할 자의 파견과 방제작업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1. 9. 22.>

1. 오염사고 분석·평가 및 방제 총괄 지휘
2. 인접 국가 간 방제지원 및 협력
3. 오염물질 유출 및 확산의 방지
4. 방제인력·장비 등 동원범위 결정과 현장 지휘·통제
5. 방제전략의 수립과 방제방법의 결정·시행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제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본부장은 해양환경 보전과 과학적인 방제를 위한 기술지원 및 자문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방제기술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본부장은 오염지역에서 원활한 방제협력과 지원 등을 위하여 해양경찰서장으로 하여금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의 소속 공무원, 유관단체·업체의 임직원 및 주민대표 등으로 지역방제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1. 9. 22., 2014. 11. 19., 2017. 7. 26.>

⑥ 방제대책본부, 방제기술지원협의회 및 지역방제대책협의회의 구성·운영, 수당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1. 9. 22., 2014. 11. 19., 2017. 7. 26.>

제46조 삭제 <2011. 9. 22.>

제47조(오염물질의 배출시 신고기준 등)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기준”이란 별표 6의 기준을 말한다.

제48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①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제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서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와 배출된 오염물질의 확산방지 및 제거를 위한 응급조치를 한 후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유효적절한 조치여야 한다.

1. 오염물질의 확산방지울타리의 설치 및 그 밖에 확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선박 또는 시설의 손상부위의 긴급수리, 선체의 예인·인양조치 등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조치
3. 해당 선박 또는 시설에 적재된 오염물질을 다른 선박·시설 또는 화물창으로 옮겨 싣는 조치

4. 배출된 오염물질의 회수조치
5.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자재 및 약제의 사용에 따른 오염물질의 제거조치
6. 수거된 오염물질로 인한 2차오염 방지조치
7. 수거된 오염물질과 방제를 위하여 사용된 자재 및 약제 중 재사용이 불가능한 물질의 안전 처리조치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방제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직접 하거나 관계 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오염해역을 통행하는 선박의 통제
2. 오염해역의 선박안전에 관한 조치
3. 인력 및 장비·시설 등의 지원 등

제49조(방제조치 명령)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방제조치의 기간
2. 방제조치 필요 해역의 지정
3. 제48조제1항에 따른 방제조치

제50조(비용부담의 범위 등) ① 법 제64조제4항 후단 또는 제68조제4항 본문에 따라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방제의무자”라 한다) 또는 선박·해양시설의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제조치에 든 비용부담의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1. 9. 22., 2018. 4. 30.>

② 해양경찰청장, 법 제6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8조제4항 본문에 따라 제1항의 비용을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산출기초를 명확히 하여 방제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22., 2018. 4. 30.>

제50조의2(해양오염 취약선박) 법 제6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이하 “해양오염 취약선박”이라 한다)을 말한다.

1. 6개월 이상 운항하지 않은 유조선
2. 6개월 이상 운항하지 않은 선박으로서 총톤수가 20톤 이상인 선박(유조선은 제외한다)
3. 선체 손상 등으로 인하여 해양오염 우려가 외관상 현저한 유조선
4. 선체 손상 등으로 인하여 해양오염 우려가 외관상 현저한 선박으로서 총톤수가 20톤 이상인 선박(유조선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6. 6. 30.]

제51조(방제선등의 배치 등) ①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 및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이하 “방제선등”이라 한다)를 배치·설치(공동배치·설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하는 경우 별표 8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4. 30.>

② 제1항 외에 배치·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법 제6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방제선등의 배치를 위탁받은 공단이 방제조치 또는 배출방지 조치를 하는 경우 방제의무자가 비용부담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 4. 30.>

제52조(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등) ① 해양경찰청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4항에 따른 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방제조치기관”이라 한다)은 방제의무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 우선하여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7. 2.>

② 방제조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우선 방제조치를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에게 방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방제의무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
2.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방제의무자의 방제조치만으로는 곤란하거나 긴급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공단이 방제조치를 한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은 그 소요 비용을 방제조치기관에 청구할 수 있으며, 방제조치기관은 이를 공단 이사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6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수역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개정 2009. 12. 14., 2011. 9. 22.>

제53조(비용부담의 면제사유) 법 제68조제4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전쟁·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1. 9. 22.>

제54조(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배치의무자가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는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는 별표 9와 같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부과하였거나 납부된 방제분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신설 2011. 3. 9.>

1. 선박 또는 해양시설 소유자의 운항계획 변경 등으로 방제분담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방제분담금의 부과대상 또는 산정방법이 잘못 적용된 경우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방제분담금을 조정하거나 환급할 경우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환급 시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방제분담금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1. 3. 9.>

④ 방제분담금의 납부통지(제3항에 따른 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방제분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신청은 방제분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신설 2011. 3. 9., 2017. 9. 19.>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며,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

나 환급하여야 한다.<신설 2011. 3. 9.>

⑥ 방제분담금의 부과금액은 3년마다 다시 산정한다.<개정 2011. 3. 9., 2014. 12. 30.>

⑦ 그 밖에 방제분담금의 부과·징수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1. 3. 9.>

제54조의2(가산금) 법 제69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방제분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 4. 30.]

제54조의3(독촉) 공단은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독촉하려는 경우 내야 할 방제분담금·가산금 및 그 납부기한·장소를 납부의무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4. 30.]

제54조의4(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 ① 공단은 법 제69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 제6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선박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선박출입신고서

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위험물반입신고서

2. 법 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제1호 각 목의 자료

나. 법 제33조에 따른 해양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내용

다. 「관세법 시행령」 제176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반입신고서

라.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2항에 따른 수입 신고서

② 공단은 법 제69조의3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출기한의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출 요구 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 요구 자료의 목록

4. 제출 방법

[본조신설 2018. 4. 30.]

제6장 해양환경관리업 등

제55조(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① 법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12. 29.>

1.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선박·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3. 기술요원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0. 12. 29.>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의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신설 2011. 9. 2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1., 2020. 12. 29.>

1. 법 제7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6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기술요원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3.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장비 및 설비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그 밖에 법 및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1. 9. 2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1.>

제56조(해양환경관리업의 기술요원) ① 법 제7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요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3. 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 또는 「선박직원법」에 따른 5급 이상의 기관사 자격을 취득했을 것

나. 해양오염방제업·유창청소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2. 법 제121조제3호에 따른 교육·훈련과정(가장 마지막에 이수한 교육·훈련과정을 기준으로 한다)을 이수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

②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기술요원을 1명 이상 보유해야 한다. 다만, 법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보유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29.]

제56조의2 삭제 <2020. 12. 1.>

제57조 삭제 <2020. 12. 1.>

제7장 해양오염영향조사

제58조(해양오염영향조사) ① 법 제7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란 별표 12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②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의 조사기간은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특성,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조사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6. 6. 30.>

③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기간 동안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된 날부터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6. 6. 30.>

④ 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26. 6. 30.>

⑤ 법 제7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된 날부터 3개월을 말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6. 6. 30.>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이 대량으로 배출된 경우
2. 오염물질의 확산으로 양식시설 등의 대량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제59조(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별 세부항목) 법 제78조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별 세부항목은 별표 14와 같다.

제60조(해양오염영향조사의 비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0조에 따라 해역이나 오염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조사에 필요한 표준비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선박소유자나 해양시설의 설치자가 파산한 경우

제60조의2(침몰선박에 대한 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 비용 등) ① 법 제83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침몰선박(「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해양사고로 해양에서 침몰된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침몰선박 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양·수거하는 데에 드는 비용
2. 침몰선박의 연료유를 수거·회수하는 데에 드는 비용

3. 침몰선박에 적재된 화물(침몰선박에 적재되었다가 이탈된 화물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양·수거하는 데에 드는 비용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침몰선박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침몰선박을 공매하여 법 제8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침몰선박의 가액이 공매에 드는 비용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침몰선박을 공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매의 대상이 되는 침몰선박의 명칭 및 주요 제원(諸元)

2. 공매의 일시 및 장소

3. 입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라 공매를 하여 취득한 금액에서 법 제8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에 든 비용과 공매에 든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6. 17.]

제8장 삭제 <2024. 12. 31.>

제61조 삭제 <2024. 12. 31.>

제62조 삭제 <2024. 12. 31.>

제63조 삭제 <2024. 12. 31.>

제64조 삭제 <2024. 12. 31.>

제65조 삭제 <2024. 12. 31.>

제66조 삭제 <2024. 12. 31.>

제67조 삭제 <2024. 12. 31.>

제68조 삭제 <2024. 12. 31.>

제69조 삭제 <2024. 12. 31.>

제70조 삭제 <2024. 12. 31.>

제71조 삭제 <2024. 12. 31.>

제9장 해양환경공단 <개정 2018. 4. 30.>

제72조(공단의 사업) ① 법 제97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 12. 29.>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및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작성 대행
2. 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의 지원 및 육성
3. 해양오염방제 관련 국제협력
4. 해양오염방제 관련 연구·개발 및 기술용역사업
5. 해양오염방제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홍보
6. 침몰선박(침몰우려 선박 및 침수선박을 포함한다)의 관리

② 법 제9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4. 4. 16., 2024. 12. 31.>

1. 삭제 <2020. 12. 1.>
2.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
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의 대행
4. 법 제110조제5항에 따른 자재·약제에 대한 성능시험
5.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선박의 운영
6. 해양환경 관련 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한 보유자산 임대사업
7. 방치선박의 관리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9.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하는 사업

③ 법 제97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6. 27., 2020. 12. 1.>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측정시설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유입·확산방지시설,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시설
3. 법 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4. 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선박처리장
5. 해양에 배출 또는 유입되는 폐기물 처리 관련 시설
6. 공단의 설립목적에 필요한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치를 승인하는 시설

제73조(이사회 운영 등) ① 법 제10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104조에 따른 출자·출연 및 차입에 관한 사항
4. 법 제106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5. 정관에서 정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중요재산의 취득·관리 및 그 처분에 관한 사항
7. 공단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8.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②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4조(출자) 공단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가액
3. 출자 또는 출연대상 사업개요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제75조(차입) 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자금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금차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차입사유 및 차입금액
2. 차입처
3. 차입의 조건
4.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5. 자금차입을 결정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제76조(채권의 형식) 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가 있으면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제77조(채권의 발행방법) ①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모집·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이를 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78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78조(채권의 응모 등) ①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하려는 채권의 수, 인수가액 및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② 채권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단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율
5. 채권상환의 방법 및 기간과 이자지급의 방법
6. 채권발행의 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7.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8.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

제79조(총액인수의 방법) 제78조는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80조(채권발행총액) 공단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채권청약서에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81조(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공단은 채권의 응모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금액의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공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부금 전액이 납부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제82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고 공단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공단의 명칭
2. 제78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3. 채권의 번호
4. 채권의 발행 연월일

제83조(채권원부)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3. 제78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
- ②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취득 연월일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단의 근무시간 중에는 언제든지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84조(이권흡결의 경우) ① 이권(利權) 있는 무기명식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 이권이 흡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권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85조(채권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공단은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를 채권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를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단은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를 채권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제86조(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은 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에는 예산총칙·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를 포함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면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적은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87조(결산서의 제출) 공단이 법 제107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때 회계연도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5. 10., 2018. 10. 30.>

1. 해당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제10장 보칙

제88조(협정의 체결) ① 법 제1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협정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6. 11.>

- ② 제1항에 따른 협정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③ 제1항에 따른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표 18과 같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정을 체결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89조(출입검사·보고 등) ①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에 대한 출입검사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2. 31., 2013. 3. 23.>

1. 선박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대항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의 검토결과 선박 또는 선박 관련 사업장·사무소에 출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선박에 대한 출입검사·보고는 각 선박에 대하여 연 1회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선박사고 등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양시설 등에 대한 출입검사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09. 12. 31., 2013. 3. 23., 2018. 4. 30.>
1.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법 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 수거·처리 및 저장과 관련하여 위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2. 법 제33조에 따라 신고된 해양시설이 잔류성오염물질을 환경관리해역 안에서 그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법 제45조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과정에서의 적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4.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한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유증기를 배출한 혐의가 있는 경우
 5. 삭제<2020. 12. 1.>
 6. 삭제<2020. 12. 1.>
 7. 법 제110조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형식승인대상설비를 제작·제조 또는 수입하는 과정에서의 적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④ 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그 시설에 출입하여 확인·점검 및 검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09. 12. 3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4. 30., 2026. 6. 30.>
1. 법 제34조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의 비치 및 기록의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2. 법 제35조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이행 및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3. 법 제36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보유, 교육이수 여부 및 업무관리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4. 법 제66조 및 법 제67조에 따른 자재·약제의 비치와 방제선등의 배치·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5. 법 제7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 또는 유창청소업을 하는 자의 법 제72조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6. 삭제 <2018. 4. 30.>
- ⑤ 법 제1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9. 12. 31.>
 1. 선박에서 해양오염이 발생한 경우
 2. 선박사고로 인하여 해양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오염원인을 알 수 없는 해양오염이 발생하여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 ⑥ 삭제 <2026. 6. 30.>

제90조(해양환경감시원)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5. 8. 3., 2017. 7. 26.>

1. 해양공학기사·해양자원개발기사·해양환경기사·해양조사산업기사·조선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폐기물처리산업기사·화공산업기사·위험물산업기사 이상이거나 항해사·기관사 또는 운항사 각 3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해양환경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무역항 단속공무원으로 임명된 자
4.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라 선박검사관으로 임명된 자
- ② 해양환경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1., 2023. 11. 7.>

1.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해양환경감시원

- 가. 제8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와 보고에 관한 사항
- 나. 해양공간으로 유입되거나 해양에 배출되는 폐기물의 감시
- 다. 해양공간에 대한 수질 및 오염원 조사활동
- 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6항에 따른 폐기물 해양배출 위탁자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사업시설에 대한 지도·검사
- 마. 환경관리해역에서의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오염원 조사 활동
- 바.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지도·점검(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및 해양오염방지관리인과 관련된 업무는 제외한다)

2. 해양경찰청장 소속 해양환경감시원

가. 제9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출입검사와 보고에 관한 사항

나.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지도·점검(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및 해양오염방지관리인과 관련된 업무로 한정한다)

다. 해양오염방제업자 및 유창청소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검사·지도

라. 해양시설에서의 방제선등의 배치·설치 및 자재·약제의 비치 상황에 관한 검사

마. 오염물질의 배출 또는 배출嫌疑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조사활동 및 감식·분석을 위한 오염시료 채취 등

제91조(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19조제3항에 따라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및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25., 2025. 4. 1.>

1. 해양오염감시 및 해양환경정화활동

2. 해양오염방제작업

3. 해양환경 관련 연구개발

4. 해양환경의 조사·연구·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및 활동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9조제3항에 따라 민간단체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의 대상,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신설 2025. 4. 1.>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9조제3항에 따라 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신설 2025. 4. 1.>

[제목개정 2025. 4. 1.]

제91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1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해양수산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행위자 및 오염물질의 배출량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3. 3. 23., 2020. 12. 29.>

③ 포상금은 300만원 이내에서 별표 18의2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등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 또는 고발을 하고 포상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하고 포상금 배분방법에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9. 22.]

제92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법 제1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최초의 교육·훈련과정과 자격 유지 등을 위한 그 밖의 교육·훈련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0. 12. 29., 2025. 3. 4.>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 관련 교육·훈련과정: 선박에서의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 등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2.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 관련 교육·훈련과정: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 등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3.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술요원의 자격 관련 교육·훈련과정: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의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2. 29.>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과정과 유사한 교육·훈련과정의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93조(수수료 징수에 대한 예외) 공단은 법 제122조제3항에 따라 방제선등의 배치·설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방제분담금 납부자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방제선등의 배치·설치를 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4.>

제94조(권한의 위임) ① 삭제 <2014. 11. 1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 11. 7.>

1.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
2.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선박의 출입검사와 보고 등의 명령
 - 가. 국내항해에 운항하는 대한민국선박
 - 나. 국제항해에 운항하는 대한민국선박으로서 제94조제4항제19호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출입검사를 하지 아니한 선박
3. 법 제119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 12. 29.>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의 구성
2. 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의 설정 및 고시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2. 31., 2011. 9. 22., 2012. 11. 27., 2013. 3. 23., 2013. 4. 22., 2014. 9. 24., 2014. 11. 19., 2014. 12. 16., 2015. 1. 6., 2016. 12. 30., 2017. 6. 27., 2018. 4. 30., 2019. 7. 2., 2020. 12. 1., 2020. 12. 29., 2022. 11. 15., 2023. 11. 7., 2024. 4. 16., 2026. 6. 30.>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환경관리해역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만 해당한다)
- 1의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해양환경의 오염원에 대한 조사
- 1의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 1의4.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배출물의 승인
- 1의5.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해상에서 유조선 간(이하 “선박대선박”이라 한다)에 기름화물을 이송하는 작업방법 등을 기술한 계획서의 검인
- 1의6.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작업의 작업책임자 명단 및 작업 계획 보고의 접수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시설로 한정한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 2의2. 법 제36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해양시설(「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시설로 한정한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2의3.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 2의4.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개선명령, 운영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 2의5. 법 제41조의3제3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검사 및 선박에너지효율적합 확인서의 발급
- 2의6. 법 제41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보고 접수, 검증 및 검증확인서의 발급
- 2의7.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선박으로부터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인도받는 업체 또는 단체의 지정·고시
- 2의8.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연료유 사용의 인정
- 2의9.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유조선에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중 또는 항해 중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는 관리계획서의 검인
3. 법 제49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검사 또는 예비검사
4.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협약검사증서의 발급
5.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명령 및 항해정지처분
6.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항만국통제
7. 법 제60조에 따른 재검사
8. 삭제<2020. 12. 1.>
- 8의2. 삭제<2020. 12. 1.>

- 8의3. 삭제<2020. 12. 1.>
- 9. 삭제<2020. 12. 1.>
- 10. 삭제<2020. 12. 1.>
- 10의2. 삭제<2020. 12. 1.>
- 11. 삭제<2024. 12. 31.>
- 12. 삭제<2024. 12. 31.>
- 13. 삭제<2024. 12. 31.>
- 13의2. 삭제<2024. 12. 31.>
- 14. 삭제<2024. 12. 31.>
- 14의2. 삭제<2024. 12. 31.>
- 14의3. 삭제<2024. 12. 31.>
- 14의4. 삭제<2024. 12. 31.>
- 14의5. 삭제<2024. 12. 31.>
- 15. 법 제110조제3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
- 15의2. 법 제11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시험·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제작·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 면제 확인
- 16. 법 제110조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시험
- 17. 법 제110조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검정
- 17의2. 법 제110조제7항 전단에 따른 협약당사국에서 선박에 형식승인대상설비를 설치한 자의 인정
- 18. 법 제110조제9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의 취소 및 업무정지
- 18의2. 법 제110조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시험 합격의 취소
- 18의3. 법 제110조제11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검사
- 18의4. 법 제110조제12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 제조자 및 수입자에 대한 보완 또는 교환 명령, 형식승인 및 성능시험 합격의 취소
- 18의5. 법 제110조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법 제110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 19.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선박(국내항해에 운항하는 대한민국선박은 제외한다)의 출입검사와 보고
- 19의2. 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해양시설(「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시설로 한정한다)의 자료제출·보고 및 출입검사
- 20.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감시원 지정
- 20의2. 법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위촉 및 경비 지급
- 21. 법 제117조에 따른 선박의 정선·검색·나포·입출항금지 명령 등

22. 법 제120조제1호의2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폐쇄명령을 위한 청문

23. 법 제120조제4호에 따른 평가대행자 등록 취소를 위한 청문

24. 법 제120조제5호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의 취소 및 업무정지를 위한 청문

25. 법 제1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제6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9. 12. 31., 2011. 9. 22., 2014. 11. 19., 2017. 7. 26., 2018. 4. 30., 2019. 7. 2., 2020. 12. 29., 2024. 4. 16., 2026. 6. 30.>

1.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

1의2.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 신고의 수리

1의3. 법 제38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출되는 오염물질관리대장의 접수

2. 법 제6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방제조치명령 및 방제조치

2의2.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 취약선박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및 그 결과의 통지

2의3. 법 제6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

3.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선박입출항금지 또는 시설사용정지 명령

4.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 명령

5. 법 제68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방제조치 및 비용부담 조치

5의2. 법 제6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운영, 교육·훈련의 실시 및 경비·보상금의 지급

6. 법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의 등록

7.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방제 및 청소·수거처리실적서 수리

8.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자 및 유창청소업자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 수리

9.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10. 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박해체 신고 수리 및 시정명령

11.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12. 법 제1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출입검사와 보고 등의 명령

13.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감시원의 지정

13의2. 법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위촉 및 경비 지급

14. 법 제117조에 따른 선박의 정선·검색·나포·입출항 금지 명령 등

14의2. 법 제11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15. 법 제120조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 등록의 취소를 위한 청문

16. 법 제1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며, 시·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신설 2009. 12. 31., 2011. 9. 22., 2013. 3. 23., 2014. 9. 24., 2017. 6. 27., 2017. 9. 19., 2018. 4. 30., 2020. 12. 29.>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 어항, 「항만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안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 무역항만 해당한다)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항만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의 해양시설로 한정한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 2의2. 법 제36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해양시설(「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시설은 제외한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해양시설(「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 명령, 출입검사 및 확인·점검
4. 법 제1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항만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안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에서 법 제13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항만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에서 법 제13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법 제132조제2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⑦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23. 11. 7., 2026. 6. 30.>
 1. 법 제110조제4항 본문에 따른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2. 법 제110조제4항 단서에 따른 시험·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제작·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면제 확인
 3. 법 제110조제5항에 따른 자재·약제에 대한 성능시험
 4. 법 제110조제6항 전단에 따른 자재·약제에 대한 검정
 5. 법 제110조제7항 전단에 따른 협약당사국에서 선박에 자재·약제를 비치·보관한 자의 인정
 6. 법 제110조제9항에 따른 자재·약제의 형식승인의 취소 및 업무정지
 7. 법 제110조제10항에 따른 자재·약제의 성능시험 합격의 취소
 8. 법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재·약제를 제외한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하는 자재·약제(이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라 한다)의 성능인증
 9. 법 제110조의2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의 성능시험의 실시
 10. 법 제110조의2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의 검정
 11. 법 제110조의2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의 성능인증의 취소
 12. 법 제110조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법 제110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제목개정 2017. 7. 26.]

제95조(업무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4. 22., 2016. 12. 30., 2017. 6. 27., 2018. 4. 30., 2020. 12. 29., 2021. 10. 14.>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해양환경의 측정
 2. 법 제11조에 따른 해양환경정보망의 구축, 해양환경정보의 제공 및 관련 자료 제출의 요구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측정·분석 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4.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의 관리
 5.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선박 또는 처리시설의 운영
 6.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
 - 6의2.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오염실태 및 진행상황 등에 대한 측정·조사
 7.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의 설치·운영
 - 7의2. 법 제8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침몰선박 관련 조치
 8. 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선박처리장의 설치·운영
 9. 법 제121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과정의 운영
 10. 법 제122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 수거·처리 비용의 징수
- ② 해역관리청 중 시·도지사는 법 제123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대상사업의 범위
 2. 위탁대상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위탁계약기간(계약기간의 수정·갱신 및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위탁대가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위탁업무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 일부의 재위탁에 관한 사항

제96조(자료제출) 해양경찰서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2. 31., 2011. 9. 22., 2013. 3. 23., 2014. 11. 19., 2015. 1. 6., 2017. 7. 26.>

제9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법 제12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

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18. 4. 30.>

1. 법 제71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81조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삭제 <2024. 12. 31.>
 4. 법 제101조에 따른 공단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110조의3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의 신고에 관한 사무
- [본조신설 2014. 12. 30.]
- [중전 제96조의2는 제96조의3으로 이동 <2014. 12. 30.>]

제96조의3(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54조 및 별표 9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2. 삭제 <2024. 12. 31.>
- [전문개정 2023. 3. 7.]

제11장 벌칙

제97조(오염물질) 법 제13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분뇨、오수 등 폐기물과 기름, 유해액체물질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기준을 초과하는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9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전문개정 2011. 9. 22.]

부칙 <제20544호, 2008. 1. 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6 해양자원의 이용、개발의 대상 사업란 중 제3호의 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 (해양오염방기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92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기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제9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오염방기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과정을 2011년 1월 1일부터 운영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를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②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본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8의 규정에 의한”을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③ 도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시험과목란의 제1호 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④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3. 법규의 과목내용란 제5호, 같은 표 제4호가목 과목내용란 (4)의 (다) 및 같은 표 제5호 7. 법규 및 직무일반의 과목내용란 제4호 중 “해양오염방지법”을 각각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 비고란의 제5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비고란의 제3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⑤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해양환경관리법」

⑥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관리공단

⑦ 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 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⑧ 수로업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⑨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 4. 법규의 과목내용란 라목 및 같은 표 제2호 4. 법규의 과목내용란 라목 중 “「해양오염방지법」”을 각각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 1. 관계법령의 세부 교육내용란 라목 및 같은 호 나목 1. 관계법령의 세부 교육내용란 라목 중 “「해양오염방지법」”을 각각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⑩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방법”을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⑪ 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⑫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이용협의를 위한 서류 (공유수면매립의 경우로 한정한다)

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방제시설”을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오염방지·오염물질처리시설 및 방제시설”로 한다.

⑭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3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8. 「해양환경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

⑮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를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1^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소독, 화물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

1&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7호 중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을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한다.

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3조제2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를 각각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로 한다.

1(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5항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2)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의 제5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제1호다목의 (1) 및 같은 호 더목의 (4)부터 (7)까지의 대상사업 중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722호, 2008. 2. 29.>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3> 까지 생략

<13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7호, 제3항, 제6조제1항, 제9조제1항, 제2항 후단, 제3항, 제4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항 전단, 제5항, 제6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4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제3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8호,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후단,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후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30조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36조제1항 전단, 제3항, 제37조제3항,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항 전단, 제3항, 제60조제1항, 제64조제3항,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6조, 제67조제1항 전단, 후단, 제2항,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본문,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1항, 제4항, 제5항, 제70조제1항, 제71조제2항제2호, 제72조제2항제9호, 제3항제6호,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6조제1항, 제3항, 제8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94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6조, 제98조제1항, 별표 1의 비고 2, 별표 2의 비고 2, 별표 9 제3호다목, 별표 10의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폐기물해양수거업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란 첨부서류란 제3호, 별표 15 제3호, 별표 17 비고 2 및 별표 19 제17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4호, 제26조제2항, 제43조제1호다목, 제44조제3항, 제51조제2항, 제55조제3항, 제58조제3항제1호, 제67조제1항 전단, 제88조제1항, 제8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3항, 제96조, 제97조, 제98조제4항, 별표 6 '유해액체물질'란의 종류란, 별표 12 '유해액체물질'란의 종류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별표 16 '준설토의 해양투기'란의 대상사업란 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의 차관 및 국무조정실의 정책차장과 해양경찰청장”을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의 차관 및 국무총리실의 국무차장과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94조제2항제8호나목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6조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94조제3항제2호 및 제8호를 삭제한다.

<135>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1185호, 2008. 12. 2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1* 까지 생략

1(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으로 한다.

2) 부터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214호, 2008. 12. 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5> 까지 생략

<166>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유해액체물질의 종류란 제1호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167>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622호, 2009. 7. 7.>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 、 <생략> 、 、 、 부칙 제2조는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위원회”를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8조부터 2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부칙 <제21882호, 2009. 12. 14.> (항만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2# 까지 생략

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과 제3호에 따른 연안항

제52조제4항 및 별표 15 제1호가목 중 “ 「항만법」 제2조제6호 ”를 각각 “ 「항만법」 제2조제5호 ”로 한다.

2% 부터2&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1964호, 2009.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51호, 2010. 5. 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8> 까지 생략

<189>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후단 및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을 각각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으로 한다.

<190>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449호, 2010. 10. 1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 ”를 각각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로 한다.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5 제1호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의 대상사업란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2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3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4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4호”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5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7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7호”로 한다.

별표 15 제1호의 공유수면의 매립의 대상사업란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공유수면을 점용하는 경우 별표 16의 준설토의 해양투기의 대상 사업란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7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7호”로 하고, 같은 표의 해양자원의 이용·개발의 대상 사업란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9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9호”로 한다.

3) 및3!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467호, 2010. 11.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 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06호, 2011. 3.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제분담금의 조정 및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거나 납부하는 방제분담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158호, 2011. 9.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해역·수역 밖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같은 해역·수역으로 유입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고포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 및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84조제1항 각 호 및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지정 등을 처분기관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297호, 2011. 11. 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까지 생략

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부칙 <제23964호, 2012. 7. 20.>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3항제3호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4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1조”로 한다.

⑦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966호, 2012. 7. 2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 까지 생략

3^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3& 및3*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4207호, 2012. 11.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폐기물 또는 오염물질의 해양배출이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부담금이 체납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443호, 2013. 3. 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3>까지 생략

<14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8호, 제24조의2의 제목,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제3항, 제37조제3항,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0조제1항, 제64조제3항,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 제67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1항·제4항·제5항, 제70조제1항, 제71조제2항제2호, 제72조제2항제9호, 같은 조 제3항제6호,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6조제1항·제3항, 제8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제1항·제2항·제4항,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91조의2제1항,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6조, 별표 1 비고의 제2호, 별표 2 비고의 제2호, 별표 9 제3호다목, 별표 10의 해양오염 방제업, 유창청소업, 폐기물해양수거업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란의 첨부서류란 제3호, 별표

15 제3호, 별표 17 비고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별표 19 제2호하목의 위반행위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4호,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호다목, 제44조제3항, 제51조제2항, 제55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58조제3항제1호, 제64조제3항, 제65조제3항제2호, 제67조제1항 전단, 제70조제2항제3호, 제88조제1항, 제8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1조의2제1항, 제92조제3항, 제96조, 제97조, 별표 6의 종류란의 유해액체물질란, 별표 12의 종류란의 유해액체물질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별표 18의2의 유출물질란의 유해액체물질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6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91조의2제1항·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등”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등”으로 한다.

<145> 및 <146> 생략

부칙 <제24517호, 2013. 4.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627호, 2013. 6.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침몰선박에 대한 위해도 저감대책 실행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해양사고로 해양에서 침몰된 선박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050호,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639호, 2014. 9. 24.>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58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행한 고시, 행정처분, 그 밖의 해양경찰청장의 행위와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의 행위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94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행한 고시, 행정처분, 그 밖의 해양경찰청장의 행위와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제9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행위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25840호, 2014. 12. 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860호, 2014. 12.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처분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5943호, 2014. 12. 30.>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85호, 2015. 1. 6.>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 까지 생략

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2항제8호나목,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6조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2\$ 부터 3)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6220호, 2015. 4.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73호, 2015. 8.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무역항 단속공무원으로 임명된 자

⑧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7165호, 2016. 5.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99호, 2016. 6. 30.>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적용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제27748호, 2016.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92호, 2017. 1.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 까지 생략

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4항제1호 단서,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2항 전단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2^ 부터 2(까지 생략

부칙 <제27965호, 2017. 3. 27.>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미나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의 측정자료
2.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과 그 이행에 관한 정보
3.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 배출경로 및 배출량에 관한 자료
4.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영향조사에 관한 자료
5. 잔류성오염물질을 취급하는 업종·업체에 대한 정보

② 및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8169호, 2017. 6. 27.>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9>까지 생략

<330>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제6항,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 제5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8조제1항·제2항·제4항, 제8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91조의2제1항, 제9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6조 및 제9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4조제3항 및 제8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45조제5항, 제9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6조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55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88조제1항, 제91조의2제1항 및 제96조 중 “총리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94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을 “(권한의 위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위탁한다”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로 한다.

별표 9 제3호아목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331>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332호, 2017. 9.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제분담금 조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방제분담금의 납부통지(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583호, 2018. 1. 16.>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까지 생략

3[&]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3^{*} 부터 4[^]까지 생략

부칙 <제28586호, 2018. 1. 1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 까지 생략

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 중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안전진단 분야별로 같은 영 별표 3에 따른 장비 ”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영 별표 11에 따른 안전진단 분야별 장비 ”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제28845호, 2018. 4. 30.>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3항제3호 중 “ 선박급유업자 ”를 “ 선박연료공급업자 ”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제28846호, 2018. 4.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3호나목, 다목, 마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한 선박 또는 해양 시설에 대한 부담금은 제2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방제분담금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항한 선박에 대한 방제분담금은 별표 9 제3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유류를 수령한 기름저장시설에 대한 2018년분 이전의 방제분담금은 별표 9 제3호마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제2항제2호 중 “ 해양환경관리공단 ”을 “ 해양환경공단 ”으로 한다.

②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 해양수산부장관의 수탁 기관란 중 “ 해양환경관리공단 ”을 “ 해양환경공단 ”으로 한다.

③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5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④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5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⑤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9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5. 해양환경공단

⑦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⑧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19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제35조의2제3항제1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⑩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5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⑪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29269호, 2018. 10. 3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 까지 생략

<5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제29849호, 2019. 6. 1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1항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⑩ 생략

부칙 <제29948호, 2019. 7.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하며, 제4조, 제11조제2항, 제42조제2항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선박: 2020년 1월 1일
2. 국제항해에 사용되지 않는 선박: 2021년 1월 1일

제2조(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에 관한 적용례) 국제항해에 사용되지 않는 선박의 경우 제4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법 제49조에 따른 정기검사나 법 제50조에 따른 중간검사를 신청하는 날 또는 2021년 12월 31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름저장시설에 대한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방제분담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106호, 2019. 10. 8.> (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30977호, 2020. 8. 26.>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 까지 생략

3%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면허 양식업을 위한 시설

3^ 및 3&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1212호, 2020. 12.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5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라 지정된 해양 오염퇴적물 조사기관 및 해양배출 검사기관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양쓰레기 등 각종 오염물질”을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25조제2항 중 “법 제72조제1항”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35조, 제35조의2 및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제1항 중 “해양환경종합계획 및 폐기물해양수거·처리계획”을 “해양환경종합계획”으로, “폐기물의”를 “오염물질의”로 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5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2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부대시설”을 “시설”로 한다.

제89조제3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0조제2항제1호라목 중 “폐기물해양배출업자, 폐기물해양수거업자, 퇴적오염물질수거업자 및 폐기물 위탁자”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6항에 따른 폐기물 해양배출 위탁자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자”로 한다.

제94조제4항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10호, 제10호의2 및 제2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제2호 비고 제1호 중 “법 제23조제1항”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별표 10의 제목 중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을 “제5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의 폐기물해양배출업란을 삭제하며, 같은 표 중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폐기물해양수거업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을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으로 하고, 같은 표의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란(중전의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폐기물해양수거업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란)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란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별표 11 표의 폐기물해양배출업란, 폐기물해양수거업란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9 제2호토목, 포목 및 구목부터 두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331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항해에 사용되지 않는 선박의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에 관한 적용례) 국제항해에 사용되지 않는 선박의 소유자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다음 각 호의 날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제42조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법 제49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날
2. 법 제50조에 따른 중간검사를 신청하는 날
3. 2021년 12월 31일

제3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2조제1항에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또는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된 사람은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해양환경관리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7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 또는 유창청소업 등록을 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5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 또는 유창청소업 기술요원의 자격을 갖춘 기술요원을 보유해야 한다.

부칙 <제31380호, 2021. 1. 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453호, 2021. 2. 1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2호 중 “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 을 “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 으로 한다.

1^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31654호, 2021. 4.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처분기관이 별표 16 제8호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발전시설 용량이 5만 킬로와트 이상 10만 킬로와트 미만인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행위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법 제 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별표 15 및 별표 1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5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의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32057호, 2021. 10. 14.>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07호, 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름저장시설에 대한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2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방제분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박에 대한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항한 선박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방제분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 방제분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9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697호, 2022. 6. 14.>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5 제1호의 공유수면의 매립란의 나목16) 중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또는 제4항 ”을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제2항 또는 제4항 ”으로 한다.

2&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997호, 2022. 11.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4조제4항제11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25호, 2023. 1. 10.> (수산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 까지 생략

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3호 중 “ 「수산업법」 제8조 ”를 “ 「수산업법」 제7조 ”로 한다.

별표 4 면허수면의 범위란 중 “ 「수산업법」 제8조 ”를 “ 「수산업법」 제7조 ”로 한다.

별표 15 제1호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란의 마목 본문 중 “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어업 ”을 “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동양식업 ”으로 하고, 같은 란의 사목 단서 중 “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 ”을 “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으로 한다.

별표 15 제2호 라목 중 “ 「수산업법」 제8조 ”를 “ 「수산업법」 제7조 ”로 한다.

4& 및 4*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33321호, 2023. 3. 7.>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24호, 2023. 4. 18.>

이 영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34호, 2023. 4. 25.>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3849호,2023. 11.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담금 부과·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9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858호,2023. 11. 16.>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21호,2024. 4.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 해양수산부장관의 위탁 대상 산업융합 신제품란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측정기기”를 “「해양환경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상태의 측정·분석·검사에 필요한 장비·기기”로 한다.

부칙 <제34449호,2024. 4. 23.>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4549호,2024. 6.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름저장시설에 대한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부고지하는 방제분담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박에 대한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항한 선박에 대한 방제분담금은 별표 9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947호,2024. 10. 22.>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5167호, 2024. 12. 3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제61조부터 제71조까지)을 삭제한다.

제7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의 대행

제94조제4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3호의2, 제14호 및 제14호의2부터 제14호의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6조의2제3호를 삭제한다.

제96조의3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15부터 별표 1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9 제2호우목부터 추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5369호, 2025. 3.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96호, 2025. 3. 25.>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26호, 2025. 4.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3조는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에 대한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9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입항한 선박에 대한 방제분담금은 별표 9 제2호가목의 개

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35396호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 제91조 ” 를 “ 제91조제1항 ” 으로 한다.

부칙 <제35811호, 2025. 10. 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478호, 2026.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0조의2, 제89조제6항 및 제94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6년 8월 28일
2. 제94조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다음 각 호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제9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법 제110조제4항·제7항·제9항·제10항에 따른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형식승인 면제 확인, 인정, 형식승인 취소 및 업무정지, 성능시험 합격의 취소
2. 법 제110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의 성능인증, 성능시험의 실시, 검정, 성능인증의 취소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삭제 <2019. 7. 2.>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삭제 <2019. 7. 2.>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1. 5.>

폐기물의 단위당 부과금액 및 종류별 부과계수(제25조제3항 관련)

1. 단위당 부과금액

| 오염물질 | 부과금액 |
|------|------------------|
| 폐기물 | 1,100원/세제곱미터(m³) |

비고 : 배출량이 세제곱미터 미만은 반올림한다.

2. 종류별 부과계수

| 폐기물 종류 | 부과계수산출기준 | | | 부과계수
(A×B×C) |
|-----------------------------------|-------------------------|--------------|-------------|-----------------|
| | 육·해상배출비용차
액계수
(A) | 오염도계수
(B) | 정책계수
(C) | |
| 분뇨 | 1.0 | 1.0 | 1.2 | 1.2 |
| 가축분뇨 | 1.0 | 1.0 | 1.2 | 1.2 |
| 폐수 | 1.2 | 1.0 | 1.1 | 1.32 |
| 분뇨처리 오니(오염된 침전물) | 1.3 | 1.5 | 1.2 | 2.34 |
| 폐수처리 오니 | 1.1 | 1.5 | 1.4 | 2.31 |
| 하수처리 오니 | 1.0 | 1.5 | 1.0 | 1.5 |
| 원료동식물폐기물 | 1.2 | 1.5 | 1.0 | 1.8 |
| 수산화알루미늄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광물성폐기물 | 1.1 | 1.5 | 1.4 | 2.31 |
| 수산가공잔재물 | 1.1 | 1.5 | 1.0 | 1.65 |
| 수저준설토사 | 1.0 | 1.0 | 1.0 | 1.0 |

비고

1. 폐기물의 종류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 7조제2항에 따른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의 종류를 고려하여 유사한 종류로 분류한다.
2. 폐기물의 특성상 무게단위(톤)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그 비중을 1.2의 계수로 나누어 환산·적용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3외2] <신설 2009.12.31>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제25조의2제1항 관련)

| 오염물질 | 배출규모 |
|------|------------|
| 기름 | 1,000리터(ℓ) |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3외3] <개정 2011.9.22>

오염물질의 단위당 부과금액 및 종류별 부과계수(제25조의2제5항 관련)

1. 단위당 부과금액

| 오염물질 | 부과금액 |
|------|-------------------|
| 기름 | 350원/리터(ℓ) |

2. 종류별 부과계수

| 기름의 유형 | 해역계수 | | | 오염도계수(해양환경복원계수) (D) | 부과계수 | | |
|------------------|---------------|---------------|-------------------|---------------------|------|------|-----|
| | 환경보전해역
(A) | 특별관리해역
(B) | 그 밖의
해역
(C) | | A×D | B×D | C×D |
| 원유 | 1.2 | 1.4 | 1.0 | 1.4 | 1.68 | 1.96 | 1.4 |
| 중유 | 1.2 | 1.4 | 1.0 | 1.4 | 1.68 | 1.96 | 1.4 |
| 운할유 | 1.2 | 1.4 | 1.0 | 1.0 | 1.2 | 1.4 | 1.0 |
| 경유 | 1.2 | 1.4 | 1.0 | 0.6 | 0.72 | 0.84 | 0.6 |
| 휘발유·등유·
탄화수소유 | 1.2 | 1.4 | 1.0 | 0.3 | 0.36 | 0.42 | 0.3 |

비고: 기름의 종류가 2가지 이상 혼합 배출되어 그 배출비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오염계수가 큰 기름종류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3. 1. 10.>

해양공간의 범위(제34조 관련)

| 구분 | 범위 |
|------|---|
| 해수욕장 | 광역해수욕장, 일반해수욕장 및 마을해수욕장 |
| 하구역 | 조석의 영향을 받는 감조구역(感潮區域)의 상류경계 및 하구로 유입되는 유입하천의 유역 |
| 항만구역 |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
| 어항구역 | 「어촌·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 |
| 면허수면 |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수면 |
| 발전소 | 발전소와 최근 거리로 인접한 바닷가에서 20km 이내의 해역 |
| 제철소 | 제철소와 최근 거리로 인접한 바닷가에서 10km 이내의 해역 |
| 정유소 | 정유소와 최근 거리로 인접한 바닷가에서 10km 이내의 해역(정유소를 포함한다) |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3. 4.>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그 대리자의 자격(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

1.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자

|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 대리자 |
|--|---|
| <p>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p> <p>가. 「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직원(선장·통신장 및 통신사는 제외한다)일 것</p> <p>나. 법 제121조제1호에 따른 교육·훈련과정(가장 마지막에 이수한 교육·훈련과정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이수한 날부터 5년(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에 승선 중인 경우에는 6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p> | <p>「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직원(선장·통신장 및 통신사는 제외한다)일 것</p> |

2.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자

|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 대리자 |
|--|--|
| <p>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p> <p>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p> <p>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공학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해양환경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했을 것</p> <p>2)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을 이송하거나 배출하는 작업에 1년 이상 종사했을 것</p> <p>나. 법 제121조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과정(가장 마지막에 이수한 교육·훈련과정을 기준으로 한다)을 이수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p> | <p>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p> <p>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공학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해양환경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했을 것</p> <p>나.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을 이송하거나 배출하는 작업에 1년 이상 종사했을 것</p> |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13.3.23>

오염물질 배출 시 신고기준(제47조 관련)

| 종류 | | 양·농도 | 확산범위 |
|-------------|---|--|---|
| 폐 기 물 | 수은 및 그 화합물, 폴리염화비페닐, 카드뮴 및 그 화합물, 6가크롬화합물, 유기할로겐화합물 | 10kg 이상 | |
| | 시안화합물, 유기인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구리 및 그 화합물, 크롬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불화물, 페놀류,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100kg 이상 | |
| | 유기실리콘 화합물,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분자 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 200kg 이상 | |
| | 동·식물성 고형물, 분뇨, 오니류 | 200kg 이상 | |
| | 그 밖의 폐기물 | 1,000kg 이상 | |
| 기름 | | 배출된 기름 중 유분이 100만분의 1,000 이상이고 유분총량이 100ℓ 이상 | 배출된 기름이 1만㎡ 이상으로 확산되어 있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 유 해 액 체 물 질 | 알라클로르, 알칸,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X류 물질 | 10ℓ 이상 | |
| | 아세톤 시아노히드린, 아크릴산,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Y류 물질 | 100ℓ 이상 | |
| | 아세트산, 아세트산 무수물,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Z류 물질 | 200ℓ 이상 | |
| | 평가는 되었으나 유해액체물질목록에 등록되지 아니한 잠정평가물질 | 10ℓ 이상 | |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7]

방제조치 비용부담의 범위(제50조 제1항 관련)

1. 방제조치로 인하여 멸실된 기계·기구와 소비된 물품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2. 방제조치를 위하여 사용된 기계·기구의 수리비. 다만, 수리하여도 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방제조치를 위하여 사용되기 직전의 현존가액으로 한다.
3. 방제조치에 사용된 기계·기구의 임차료와 세척에 소요된 비용
4. 방제조치에 소요된 선박의 운항비·인건비(여비 및 후생비를 포함한다) 및 그 밖의 비용
5. 방제조치를 위한 선박의 예인, 기계·기구·물품 등의 운반, 배출 및 회수된 오염물질과 그 밖에 물건의 제거·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된 비용

비고 :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계·기구 및 물품의 경우에는 방제조치에 사용한 것과 같은 종류의 것을 급부함으로써 금전의 납부에 갈음할 수 있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19. 7. 2.>

방제선·방제장비의 배치·설치기준 (제51조 관련)

1. 선박

| 유조선 | 유조선 외의
선박 | 기름회수능력
(시간당) | 배치방법 |
|----------------------|----------------|-----------------|--|
| 톤급별(총톤수) | 톤급별(총톤수) | | |
| 500 이상
1,000 미만 | 1만 이상
3만 미만 | 35kl 이상 |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 |
| 1,000 이상
5,000 미만 | 3만 이상
5만 미만 | 50kl 이상 |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 |
| 5,000 이상
1만 미만 | 5만 이상 | 70kl 이상 |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 |
| 1만 이상
5만 미만 | — | 100kl 이상 | 총톤수합계 50톤 이상의 방제선과 방제장비 |
| 5만 이상
10만 미만 | — | 170kl 이상 | 50톤급 이상의 방제선 1척을 포함하여 총톤수합계 75톤 이상의 방제선과 방제장비 |
| 10만 이상 | — | 290kl 이상 | 75톤급 이상의 방제선 1척을 포함하여 총톤수합계 100톤 이상의 방제선과 방제장비 |

2. 기름저장시설

| 저장용량(kl) | 기름회수능력
(시간당) | 배치방법 |
|--------------------|-----------------|---|
| 1만 이상
5만 미만 | 80kl 이상 |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 |
| 5만 이상
10만 미만 | 120kl 이상 |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 |
| 10만 이상
50만 미만 | 170kl 이상 | 50톤급 이상의 방제선 1척을 포함하여 총톤수합계 75톤 이상의 방제선과 방제장비 |
| 50만 이상
100만 미만 | 250kl 이상 | 75톤급 이상의 방제선 1척을 포함하여 총톤수합계 100톤 이상의 방제선과 방제장비 |
| 100만 이상
250만 미만 | 330kl 이상 | 100톤급 이상의 방제선 1척을 포함하여 총톤수합계 125톤 이상의 방제선과 방제장비 |
| 250만 이상
500만 미만 | 420kl 이상 | 125톤급 이상의 방제선 1척을 포함하여 총톤수합계 150톤 이상의 방제선과 방제장비 |
| 500만 이상 | 720kl 이상 | 150톤급 이상의 방제선 1척을 포함하여 총톤수합계 200톤 이상의 방제선과 방제장비 |

3. 비고

가. 기름회수능력은 장비에 표시된 성능으로 하되, 표시된 성능의 적정 여부를
법제처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선급업무를 수행

하는 외국의 법인·기관·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공인된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성능시험성적서에 따라 판단한다.

- 나. 방제선은 유회수기, 기름이송펌프 및 회수한 기름을 저장할 수 있는 장치(이하 "회수유 저장장치"라 한다)를 갖춘 선박을 말한다.
- 다. 선박 또는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는 방제선을 배치하는 경우 해당 방제선의 기름회수능력 대비 100분의 160 이상의 저장능력을 보유한 회수유 저장장치를 방제선에 갖추어야 한다.
-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선박 또는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는 회수유 저장장치를 해당 방제선의 운항속도를 기준으로 3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장소에 분산하여 갖추어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방제선의 기름회수능력 대비 100분의 60 이상의 저장능력을 보유한 회수유 저장장치를 방제선에 갖추어야 한다.
- 마. 방제장비는 배출된 기름을 회수할 수 있는 모든 기계·장비 및 시설을 말한다.
- 바. 기름저장시설이 기름의 비축용 또는 비상용으로만 설치·사용되는 경우에는 방제장비만으로 기름회수능력을 갖추 수 있다.
- 사. 배치·설치 대상 기름저장시설 또는 선박을 2곳(또는 척) 이상 소유한 자가 같은 해역에 방제선·방제장비를 배치할 경우에는 각각에 적용되는 배치기준 중 기름회수능력이 가장 큰 기준을 적용한다.
- 아. 공동배치를 하려는 경우 갖추어야 할 기름회수능력은 다음 식에 따른다.

$$A + (B \times 0.5)$$

A : 공동배치대상 중 갖추어야 할 기름회수능력이 가장 큰 것

B : A를 제외한 공동배치대상이 각각 갖추어야 할 기름회수능력의 합계

- 자.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방제선등의 배치·설치를 위탁받은 공단이 방제선등을 배치·설치하는 경우에는 배치의무자에게 적용되는 배치·설치기준(기름회수능력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에 따라 방제선등을 배치·설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해역(이하 이 표에서 "해역"이라 한다)에서 둘 이상의 배치의무자로부터 방제선등의 배치·설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배치의무자에게 적용되는 배치·설치기준(기름회수능력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중 가장 큰 기준의 2배 이상으로 방제선등을 배치·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의 이사장이 효율적인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제선등을 해역 간 또는 같은 해역에 재배치·재설치하거나 추가로 배치·설치할 수 있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5. 4. 1.>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제54조제1항 관련)

1. 대상: 경유 및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류를 운송 또는 저장하는 선박 및 기름저장시설

2. 부과기준

가. 선박: 다음의 표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국내 조선소에서 새로 건조된 유조선을 시운전하는 경우에는 유조선 외의 선박 중 내항선의 부과 금액을 적용한다.

| 구분 | | 부과 기준 | 부과 금액 | 부과 방법 |
|--------------|-----|----------------|--------|-----------------|
| 유조선 | 내항선 | 선박총톤수기준
1톤당 | 2.74원 | 매 1회
입항할 때마다 |
| | 외항선 | | 14.76원 | |
| 유조선 외의
선박 | 내항선 | | 1.41원 | |
| | 외항선 | | 7.6원 | |

나. 기름저장시설

1) 경유의 경우: 유류 수량량 100 ℓ 마다 2.48원

2) 경유 외의 유류의 경우: 유류 수량량 100 ℓ 마다 8.84원

3. 부과절차

가. 선박의 방제분담금(이하 이 표에서 "분담금"이라 한다)은 입항할 때마다 부과하며, 배치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분담금은 다음 달 5일까지,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의 분담금은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선박이 입항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시 입항하는 경우에는 1회의 입항으로 본다.

나. 삭제 <2018. 4. 30.>

다. 삭제 <2018. 4. 30.>

라. 공단은 기름저장시설의 분담금을 1년간 해상으로부터의 수량량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분기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매분기 1월 전까지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배치의무자는 매분기 말일까지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 유류 수량실적이 없거나 해당 기름저장시설의 이용을 개시(해당 기름저장시설에 유류의 저장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또는 이용을 종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분담금을 부과한다.

1) 전년도 유류 수량실적이 없는 경우: 기름저장시설 규모의 100분의 50을 분담금 부과대상 물량으로 보아 분담금 부과

2) 기름저장시설의 이용을 개시하는 경우

가) 이용 개시 연도의 분담금: 해당 기름저장시설 규모의 100분의 50을 분담금 부과대상 물량으로 하되, 이용 개시일부터 이용 개시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일할(日割)계산하여 분담금 부과

나) 이용 개시 다음 연도의 분담금: 전년도 이용기간 중 유류 수량량을 기준으로 1년간 유류를 수량하였을 경우를 계산하여 수량량을 환산한 연간 유류 수량

량을 분담금 부과대상 물량으로 보아 분담금 부과

- 3) 기름저장시설의 이용을 종료하는 경우: 전년도 유류 수령량을 분담금 부과대상 물량으로 하되, 해당 기름저장시설의 이용을 종료한 연도의 1월 1일부터 이용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분담금 부과

마. 삭제 <2018. 4. 30.>

바. 삭제 <2018. 4. 30.>

사. 라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석유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석유공사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비축하고 있는 기름에 대하여는 유류의 출하량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다만, 전년도 출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5년간의 평균 출하량을 분담금 부과대상 물량으로 본다.

아. 분담금 납부대상 유종과 유사한 비중과 점도를 지닌 물질에 대한 적용 여부는 해양경찰청 또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검사결과에 따른다.

자. 분담금의 천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0] 삭제 <2020. 12. 29.>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1] 삭제 <2020. 12. 29.>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2] <개정 2013.3.23>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제58조제1항 관련)

| 종류 | | 배출량 |
|------------------------------|--|----------------|
| 폐
기
물 | 1. 수은 및 그 화합물, 폴리염화비페닐, 카드뮴 및 그 화합물, 6가크롬화합물, 유기할로젠화합물 | 100kg 이상 |
| | 2. 시안화합물, 유기인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구리 및 그 화합물, 크롬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불화물, 페놀류,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10,000kg 이상 |
| | 3. 유기실리콘 화합물,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분자 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 20,000kg 이상 |
| | 4. 동식물성고형물, 분뇨, 오니류 | 20,000kg 이상 |
| | 5. 그 밖의 폐기물 | 30,000kg 이상 |
| 기름 중 지속성유(원유·연료유·중유·운활유)와 폐유 | | 유분총량이 100kl 이상 |
| 유
해
액
체
물
질 | 1. 알라클로르, 알칸,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X류 물질 | 10,000 l 이상 |
| | 2. 아세톤 시아노히드린, 아크릴산,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Y류 물질 | 25,000 l 이상 |
| | 3. 아세트산, 아세트산 무수물,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Z류 물질 | 25,000 l 이상 |
| | 4. 평가는 되었으나 유해액체물질목록에 등록되지 아니한 잠정평가물질 | 100,000 l 이상 |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3] <개정 2021. 1. 5.>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지정기준(제58조제2항 관련)

1. 인력

| 자격 능력 | 대체 가능 인력 | |
|--|---|---------------------------|
| | 대체 경력 | 전공연구분야 |
| 가. 해양기술사 또는 수질관리기술사 중 1명 이상 보유 | ○전공연구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그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자격 취득 후 그 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해양학
환경학
환경공학 |
| 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
연환경분야의 기술사 1명 이상 보유
1) 해양직무분야 중 해양·수산양식
2) 환경직무분야 중 수질관리
3) 국토개발직무분야 중 지질 및 기반 | ○전공연구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그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자격 취득 후 그 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해양학
수산학
환경학
환경공학 |
| 다. 다음에 해당하는 생활환경분야의 기사 2명 이상 보유
1) 해양직무분야 중 해양환경·수산양식
2) 환경직무분야 중 수질환경 | ○전공연구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 해양학
수산학
환경학 |
| 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회·경제환경분야의 기사 2명 이상 보유 | ○전공연구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 경제학
수산학
지리학 |

| | | |
|-------------------------|--|--|
| 1) 정보처리직무분야
중 정보처리 | | |
| 2) 안전관리직무분야
중 산업위생관리 | | |

2. 장 비

| 명칭 | 수량 |
|---|---------|
| 가. 기름 및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 분석장비
1) 기체 크로마토 그래프-불꽃 이온화 집출기
2) 기체 크로마토 그래프-선택 질량 분석기 또는 기체 크로마토 그래프-질량 분석기
3)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4) 형광분광분석기(Spectrofluormeter) | 각 1대 이상 |
| 나. 환경독성 및 해양생태 영향평가 분석장비
1) 광학현미경(배율 1000배 이상)
2) 현광현미경
3) 해부현미경
4) 방사능 측정 계수기
5) 분광분석기(Spectrotomometer) 또는 색깔 농도 비교 판독기(plate reader) | 각 1대 이상 |

비고 : 장비를 갖춘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또는 측정대행자와 해당 장비를 임차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4]

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별 세부항목(제59조 관련)

| 분야 | 조사항목 | 비고 |
|---------|--|----|
| 자연환경 | 1. 기상
2. 해류·조류
3. 해저지질
4. 해양환경(수질·생물·퇴적물)
5. 해양생태계 | |
| 생활환경 | 1. 연안 및 해역이용
2. 수산물의 안정성
3. 공공시설의 오염피해 | |
| 사회·경제환경 | 1. 인구
2. 주거
3. 산업
4. 어업현장 | |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5] 삭제 <2024. 12. 31.>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삭제 <2024. 12. 31.>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7] 삭제 <2024. 12. 31.>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8]

협정의 내용(제88조제3항 관련)

1. 대항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적·물적 요건

가. 조직

- 1)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추는 것
- 2) 검사기준을 개발할 수 있고 해양오염방지 및 대기오염방지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추는 것
- 3) 우리나라 모든 해역을 담당할 수 있는 지역 사무소를 갖추는 것

나. 검사원

- 1) 선박검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를 확보할 것
- 2) 선박검사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제도를 갖추는 것

다. 기술개발

- 1) 검사기준을 개발하고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 2) 품질관리능력을 갖추는 것

라.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2.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대항업무의 범위

나. 외국 항만당국으로부터 항만국통제로 지적된 사항의 통보

다. 검사대행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제공

- 1) 선박검사원의 선임 및 해임
- 2) 발급된 증서
- 3) 기술자료

라. 품질관리시스템의 운영

마. 정부 또는 정부를 대신한 제3자의 정기적인 감사 수행

바. 기밀유지

사. 선박검사원의 자격

아. 협정의 개정

자. 손해배상책임

차. 협정해지요건

비고

협정의 내용 중 법 제112조에 따른 업무의 대항범위, 감독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제해사기구에서 정한 「자발적 회원국 감사 원칙 및 절차」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8의2] <개정 2013.3.23>

포상금 지급기준(제91조의2제3항 관련)

| 유출물질 \ 포상금액 | |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 | 1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 |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 5만원 |
|-----------------------------------|--|----------------------|--------------------------|--------------------------|----------------------------|---------------------------|--------------------------|------------|
| 기름 | 중질유 | 3,000 ℓ 이상 | 2,000 ℓ 이상
3,000 ℓ 미만 | 1,000 ℓ 이상
2,000 ℓ 미만 | 500 ℓ 이상
1,000 ℓ 미만 | 50 ℓ 이상
500 ℓ 미만 | 5 ℓ 이상
50 ℓ 미만 | 5 ℓ 미만 |
| | 경질유 | 5,000 ℓ 이상 | 3,000 ℓ 이상
5,000 ℓ 미만 | 2,000 ℓ 이상
3,000 ℓ 미만 | 1,000 ℓ 이상
2,000 ℓ 미만 | 100 ℓ 이상
1,000 ℓ 미만 | 10 ℓ 이상
100 ℓ 미만 | 10 ℓ 미만 |
| | 선저폐수 | | | | | | 1,000 ℓ 이상 | 1,000 ℓ 미만 |
| 해양배출폐기물
(지정해역이 아닌 해역에서 배출한 경우) | | | 10톤 이상 | 5톤 이상
10톤 미만 | 3톤 이상
5톤 미만 | 1톤 이상
3톤 미만 | 0.5톤 이상
1톤 미만 | 0.5톤 미만 |
| 폐기물 | 수은 및 그 화합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구리 및 그 화합물, 크롬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폴리염화비페닐, 6가크롬화합물, 유기할로겐화합물, 시안화합물, 유기인화합물, 불화물, 페놀류,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유기실리콘 화합물,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분자 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 | | 10톤 이상 | 5톤 이상
10톤 미만 | 1톤 이상
5톤 미만 | 0.5톤 이상
1톤 미만 | 0.5톤 미만 |
| | 동식물성고형물, 분뇨, 오니류 및 그 밖의 폐기물 | | | 25톤 이상 | 15톤 이상
25톤 미만 | 10톤 이상
15톤 미만 | 5톤 이상
10톤 미만 | 5톤 미만 |
| 유해액체물질 | 알라클로르, 알칸,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X류 물질 | | | 10,000 ℓ 이상 | 5,000 ℓ 이상
10,000 ℓ 미만 | 1,000 ℓ 이상
5,000 ℓ 미만 | 500 ℓ 이상
1,000 ℓ 미만 | 500 ℓ 미만 |
| | 아세트론, 시아노히드린, 아크릴산, 아세트산, 아세트산 무수물,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Y, Z류 물질 | | | 25,000 ℓ 이상 | 15,000 ℓ 이상
25,000 ℓ 미만 | 5,000 ℓ 이상
15,000 ℓ 미만 | 1,000 ℓ 이상
5,000 ℓ 미만 | 1,000 ℓ 미만 |
| | 평가는 되었으나 유해액체물질목록에 등록되지 아니한 잠정평가물질 | | | | | | 10 ℓ 이상 | 10 ℓ 미만 |

비고

1. 범죄의 경중, 피해의 정도 그 밖에 범인검거와 관련하여 신고인의 적극성 등 사정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기준 범위에서 금액을 증감할 수 있다.
2. 중질유란 원유, 병커유 등 지속성 기름을 말하며, 경질유란 경유, 등유, 휘발유 등 비지속성 기름을 말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9] <개정 2026. 6. 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8조 관련)**1. 일반기준**

가.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채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채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나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 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가.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공간으로부터 제97조에 따른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 법 제132조 제2항제1호 | 250 |
| 나. 법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배출물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받은 배출물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 법 제132조 제4항제1호 | 100 |
| 1) 배출물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 |
| 2) 승인받은 배출물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은 경우 | | |
| 가) 실제 배출물이 승인받은 배출물의 1.1배 미만인 경우 | | |
| 나) 실제 배출물이 승인받은 배출물의 1.1배 이 | | 20 |
| 다. 법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배출물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받은 배출물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 | 30 |

| | | |
|---|------------------|-----------------|
| 상 1.3배 미만인 경우
다) 실제 배출물이 승인받은 배출물의 1.3배 이상 1.5배 미만인 경우
라) 실제 배출물이 승인받은 배출물의 1.5배 이상 2.0배 미만인 경우
마) 실제 배출물이 승인받은 배출물의 2.0배 이상인 경우 | | 40
80
100 |
| 다. 법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장소, 배출량 등을 그 선박의 기관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32조 제4항제1호의2 | 30 |
| 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폐유저장을 위한 용기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32조 제4항제1호의3 | 30 |
| 마.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검인받은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32조 제4항제2호 | 50 |
| 바. 법 제30조 및 제34조에 따른 오염물질기록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법 제132조 제4항제3호 | 30 |
| 사. 법 제3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32조 제4항제3호의2 | 50 |
| 아. 법 제31조 및 제35조에 따른 검인받은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및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지 않거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및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32조 제4항제4호 | 30 |
| 자. 법 제32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보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32조 제4항제5호 | 50 |
| 차.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32조 제4항제6호 | 30 |
| 카. 법 제32조제3항 또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32조 제4항제6호의2 | 30 |
| 타. 법 제32조제4항 또는 제36조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 등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을 지휘·감독하게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32조 제4항제6호의3 | 30 |
| 파.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검인받은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를 비치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32조 제4항제6호의4 | 30 |
| 하.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작업에 관하여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 법 제132조 제4항제6호의5 | 30 |

| | | |
|--|-------------------|-----|
| 기록한 경우 또는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 | |
| 거.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작업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132조 제4항제6호의6 | 30 |
| 너.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32조 제2항제2호 | 250 |
| 더.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32조 제4항제6호의7 | 30 |
| 러.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32조제2항 제2호의2 | 250 |
| 머.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132조제2항 제2호의3 | 500 |
| 버.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32조 제2항제2호의4 | 500 |
| 서. 법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유지·작동한 경우 | 법 제132조 제3항제1호 | 200 |
| 어. 법 제41조의3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또는 선박에너지효율직합확인서를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32조 제4항제6호의8 | 30 |
| 저. 법 제41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132조 제4항제6호의9 | 30 |
| 처. 법 제4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를 5년 이상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32조 제4항제6호의10 | 50 |
| 커. 법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선박에 설치한 경우 | 법 제132조 제2항제3호 | 500 |
| 터. 법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체 또는 단체 외의 자에게 인도한 경우 | 법 제132조 제3항제2호 | 200 |
| 퍼.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설비의 목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관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32조 제4항제6호의11 | 30 |
| 허.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비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32조 제4항제6호의12 | 30 |
| 고. 법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관일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32조 제4항제6호의13 | 50 |
| 노. 법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관일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32조 제4항제7호 | 30 |
| 도. 법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관일지를 1년간 | 법 제132조 | 50 |

| | | |
|--|-------------------|-----|
| 보관하지 않은 경우 | 제4항제8호 | |
| 로.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연료유전환절차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32조 제4항제8호의2 | 30 |
| 모. 법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연료유공급서의 사본 및 연료유건본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32조 제2항제4호 | 300 |
| 보. 법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연료유공급서 사본 및 연료유건본을 제공한 경우 | 법 제132조 제2항제4호 | 500 |
| 소. 법 제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연료유공급서 또는 그 사본을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32조 제4항제9호 | 50 |
| 오. 법 제45조제4항을 위반하여 연료유건본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32조 제4항제10호 | 50 |
| 조.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각이 금지된 물질을 선박 안에서 소각한 경우 | 법 제132조 제3항제3호 | 200 |
| 초. 법 제46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소각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유지·작동한 경우 | 법 제132조 제3항제4호 | 200 |
| 코. 법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각이 금지된 해역에서 주기관·보조기관 또는 보일러를 사용하여 물질을 소각한 경우 | 법 제132조 제3항제5호 | 200 |
| 토. 법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유증기 배출제어 장치의 작동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32조 제4항제11호 | 50 |
| 포.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검인 받은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를 비치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32조 제4항제11호의2 | 30 |
| 호. 법 제57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을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32조 제4항제12호 | 30 |
| 구. 법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방제조치의 협조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32조 제2항제5호 | 250 |
| 누. 제70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32조 제2항제6호 | 250 |
| 두. 법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32조 제4항제13호 | 50 |
| 루. 법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을 작성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 법 제132조 제4항제14호 | 100 |
| 무. 법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오염물질 방제업무를 지연하거나 방제의무자 등의 방제조치를 방해한 경우 | 법 제132조 제4항제15호의2 | 50 |
| 법 제74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양환경관리업자 | 법 제132조 | 250 |

| | | |
|--|-----------------|-------|
| 의 권리·의무 승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제2항제8호 | |
| 수.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의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법 제132조 제1항제1호 | 1,000 |
| 우. 삭제 <2024. 12. 31.> | | |
| 주. 삭제 <2024. 12. 31.> | | |
| 추. 삭제 <2024. 12. 31.> | | |
| 쿠.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32조 제4항제18호 | 50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1.] [해양수산부령 제804호, 2026. 7. 1.,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선박규제 - 해사산업기술과) 051 - 773 - 5834, 5835
 해양수산부 (해양오염방제 - 해양환경정책과) 051 - 773 - 5283, 5293
 해양수산부 (총괄, 법령개정사항 - 해양환경정책과) 051 - 773 - 5289, 529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잔류성오염물질)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3. 6. 19., 2018. 5. 1.>
 [제목개정 2018. 5. 1.]

제3조(해양시설) 법 제2조제1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제4조 삭제 <2017. 9. 22.>

제5조(해양환경측정망) ① 국립수산물과학원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양환경측정망(이하 “해양환경측정망”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1. 9. 29., 2013. 3. 24., 2016. 12. 23., 2017. 1. 12., 2017. 9. 22., 2018. 5. 1., 2021. 1. 7.>

1. 항만환경측정망
2. 연근해환경측정망
3. 환경관리해역환경측정망
4. 하구역환경측정망
5. 해양대기환경측정망
6. 오염심각해역수질자동측정망
7. 해양방사성물질측정망

② 국립수산물과학원장은 해양환경측정망을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양환경측정망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해양방사성물질측정망의 구성·운영계획에 관하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1. 9. 29., 2013. 3. 24., 2017. 1. 12., 2017. 9. 22., 2018. 5. 1., 2021. 1. 7.>

1. 조사 시기 및 횟수
2. 측정위치 및 위치도면
3. 측정항목 및 방법

4. 해역구분 및 측정망 종류

5. 그 밖에 해양환경측정망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 구성·운영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고시해야 한다.<개정 2011. 9. 29., 2013. 3. 24., 2017. 9. 22., 2021. 1. 7.>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매년 해양환경측정망의 운영결과를 평가해야 한다.<개정 2011. 9. 29., 2013. 3. 24., 2021. 1. 7.>

제6조(해양환경정보망) ① 삭제 <2017. 9. 22.>

②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이하 “해양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해양환경정보망(이하 “해양환경정보망”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자의 요청이 있으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정보를 제공할 때 해양환경정보의 기초자료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제외한다.<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3. 6. 19., 2017. 9. 22., 2018. 5. 1., 2023. 12. 2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으로 하여금 해양환경정보망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해양환경정보의 분석·평가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6. 19., 2017. 9. 22., 2018. 5. 1.>

④ 해양환경정보망의 세부적인 구축 및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3. 6. 19.>

제7조(정도관리) ①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측정·분석기관(이하 “측정·분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1년마다(법 제13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측정·분석기관은 3년마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이하 “정도관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9. 29., 2013. 3. 24., 2016. 12. 23., 2017. 9. 22., 2018. 5. 1.>

②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의 실시결과를 분석하여 다음 해 2월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1. 9. 29., 2013. 3. 24., 2017. 9. 22., 2018. 5. 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측정·분석기관의 측정·분석능력을 평가한 결과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한 기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1. 9. 29., 2013. 3. 24.>

1.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의 해당 측정·분석 항목에 대한 교육 수강 명령
2. 현지지도의 실시
3. 관련 장비 및 기기의 개선·보완
4.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④ 제3항에 따른 평가 및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1. 9. 29., 2013. 3. 24.>

제7조의2(정도관리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기준(이하 “정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려는 경우 측정·분석항목별로 해양환경상태 및 해양환경조사의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정도관리기준에는 측정·분석능력의 평가방법 및 측정·분석과 관련된 자료의 검증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7. 9. 22.]

제7조의3(정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영 제7조의2에 따른 해양환경종합조사 실시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정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된 정도관리계획에 대하여 해당 조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측정·분석과 관련된 자료가 해양환경정보망에 활용될 수 있을 것
2. 정도관리기준에 따를 것
3. 정도관리를 위한 교육의 실시계획을 포함할 것

② 조사기관은 관련 조사를 완료한 때에 지체없이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정도관리계획의 이행 현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9. 22.]

제8조(측정·분석능력 인증)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측정·분석의 기준”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숙련도평가와 현장평가로 나누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1. 9. 29., 2013. 3. 24.>

②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1. 상호 또는 시험실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2. 측정방법, 측정원리나 측정항목이 변경되는 경우
3. 측정기기의 기능이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외관이나 내부구조 (운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가 변경되는 경우

③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측정·분석능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각각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1., 2011. 9. 29., 2012. 6. 27., 2013. 3. 24., 2016. 12. 23., 2017. 6. 28.>

1. 측정·분석 장비 및 설비의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2. 측정·분석 인력의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3. 측정·분석 실험실의 구조 및 환경 조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설비, 인력 및 실험실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측정·분석능력 인증을 신청한 기관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29., 2013. 3. 24.>

제8조의2(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등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7. 9.]

제9조(해양환경개선조치) ①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1. 연안습지정화, 연약지반 보강 등 해양환경복원사업의 실시
2. 삭제<2020. 12. 4.>
3. 삭제<2020. 12. 4.>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양환경의 오염원에 관한 조사를 할 때에는 공장밀집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해역, 양식장 밀집해역 및 항만 등 해양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조사하되, 해양환경의 오염원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해역의 환경현황 및 오염도를 함께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2. 11. 29., 2015. 1. 8.>

③ 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의 오염원 및 오염도 조사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 3. 14., 2013. 3. 24.>

④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오염물질 유입·확산방지시설의 설치방법 및 오염물질의 수거·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3. 14., 2012. 11. 29., 2013. 3. 24., 2017. 6. 28., 2021. 6. 30.>

1. 부유차단막 또는 수질오염 방지막은 부유물질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기상변화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2. 삭제<2020. 12. 4.>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10조(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납부)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정보통신망으로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의 납부고지 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3. 14., 2010. 1. 12., 2013. 3. 24.>

②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담금분할납부 허가 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조정신청의 사유를 입

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1. 12., 2014. 11. 19., 2015. 1. 8.>

⑤ 영 제32조의2에 따른 독촉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8. 5. 1.>

제11조(폐기물의 배출허용기준) ① 삭제 <2020. 12. 4.>

②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양시설 또는 영 제34조에 따른 해양공간(이하 “해양시설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할 수 있다. 다만, 해양시설등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해역별 배출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20. 12. 4.>

③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양시설등에서 발생하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을 처리하는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④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라 해양시설등의 오염사고에 있어서는 오염사고에 대처할 목적으로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름, 유해액체물질 또는 이들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 등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개정 2021. 1. 7.>

제12조 삭제 <2020. 12. 4.>

제13조 삭제 <2020. 12. 4.>

제14조 삭제 <2020. 12. 4.>

제15조 삭제 <2020. 12. 4.>

제16조(해역관리청의 조사·측정활동 내용)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조사·측정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측정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1. 삭제<2020. 12. 4.>
 2. 해당 조사대상의 위치 및 규모 등 이용현황
 3. 해당 해양공간 인근의 오염방지시설의 위치, 오염방지시설의 규모, 처리량 등 오염방지시설 현황
 4. 수질오염도, 퇴적물오염도, 오염원의 분포현황 등 오염현황
 5.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6. 그 밖에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측정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 3. 14., 2013. 3. 24.>

제17조(해양시설의 신고 등) ① 해양시설의 소유자(설치·운영자를 포함하며, 그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시설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해양시설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양시설 최초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

- 다. <개정 2008. 3. 14., 2010. 1. 12., 2011. 4. 11., 2015. 1. 8., 2017. 6. 28., 2018. 5. 1., 2024. 6. 28.>
1. 해양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한다)
 2. 법 제36조에 따른 해양시설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확인서(별표 1 제1호의 시설인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35조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인 경우로 한정한다)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양시설 신고대장에 적고,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양시설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0. 1. 12., 2015. 1. 8., 2017. 6. 28.>
 - ③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신설 2017. 6. 28., 2018. 5. 1.>
 1. 해양시설의 소유자(사업장의 명칭 및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변경
 2. 해양시설(별표 1 제1호가목의 시설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설치 장소의 변경
 3. 해양시설(별표 1 제1호가목의 시설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규모의 변경(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정한다)
 - ④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해양시설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양시설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 6. 28.>
 1. 제2항에 따른 해양시설 신고증명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⑤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양시설 신고대장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양시설 신고증명서 뒤쪽에 각각 그 변경내용을 적은 후 해양시설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17. 6. 28.>
 - ⑥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해양시설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헛어서 못쓰게 된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해양시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다.<개정 2008. 3. 14., 2010. 1. 12., 2015. 1. 8., 2017. 6. 28.>
 - ⑦ 제1항에 따라 해양시설의 신고를 한 자가 해양시설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해양시설 폐업신고서에 해양시설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0. 1. 12., 2015. 1. 8., 2017. 6. 28.>

제18조(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양시설”이란 별표 1 제1호가목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 ② 법 제34조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이하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의 사용량과 선적 및 반입에 관한 사항

2. 유성혼합물 또는 유해액체물질 세정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해양시설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처리에 관한 사항
- ③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제19조(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① 법 제35조에 따라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이하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라 한다)를 갖추어야 하는 해양시설은 별표 1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 중 합계용량 300킬로리터 이상인 시설로 한다. <개정 2018. 5. 1., 2024. 6. 28.>

②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 9. 29., 2018. 5. 1.>

1. 해양시설의 위치, 규모, 소유자(사업장의 명칭 및 대표자를 포함한다) 및 관리자에 대한 정보(군사시설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 유출사고 발생 시 해양시설의 관리자가 하여야 할 신고 및 보고의 절차에 관한 사항
3.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 유출을 줄이기 위하여 해양시설의 종사자가 하여야 할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4. 해양시설의 주요설비, 시설구조도면 및 주요배관장치의 배치도면
5. 해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방제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해양시설 주변해역의 조류, 환경 등 해역특성에 관한 사항
7.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 유출사고 예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해양오염사고 방제에 필요한 방제조직, 방제장비·자재 현황 및 동원체계
9. 해양시설 오염사고 규모별 방제조치계획

③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검인신청서에 해당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19., 2014. 11. 19., 2017. 7. 28.>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8. 5. 1.>

1. 해양시설의 소유자(사업장의 명칭 및 대표자를 포함한다) 및 관리자에 대한 정보의 변경
2. 해양시설의 위치의 변경
3. 해양시설의 규모의 100분의 30 이상의 증가
4. 해양시설의 주요설비, 시설구조도면 및 주요배관장치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

⑤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변경검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변경검인신청서에 변경된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첨부하여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 5. 1.>

⑥ 해양경찰서장은 제3항에 따른 검인신청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검인신청이 있는 경우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에 별표 9의 검인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신설 2018. 5. 1.>

제20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해양시설) 법 제36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양시설”이란 별표 1 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제20조의2(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 신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 확인서
2.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본조신설 2021. 1. 7.]

[중전 제20조의2는 제20조의3으로 이동 <2021. 1. 7.>]

제20조의3(해양시설의 안전점검)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시설”이란 별표 1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의 실시 시기·방법 및 결과보고는 별표 9의2에 따른다.

③ 법 제36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신설 2018. 5. 1.>

1. 해양시설의 침하 또는 균열
2. 해저송유관, 호스, 저장탱크, 돌핀 또는 원유송유용 부이의 결함

[본조신설 2014. 9. 17.]

[제20조의2에서 이동 <2021. 1. 7.>]

제21조(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수거·처리) ①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서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거·처리하게 해야 하는 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9. 17., 2018. 5. 1., 2021. 1. 7.>

1. 폐기물
2. 기름(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스스로의 설비나 장비를 이용하여 유분 성분이 100만분의 15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해액체물질(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스스로의 설비나 장비를 이용하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가목2)에 따른 가지역에 적용하는 같은 표 제2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포장유해물질 잔류물

②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자는 해양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을 수거·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해양시설의 소유자에게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을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의 보관기간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13. 6. 19.>

③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오염물질을 수거·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물질 인계인수서를 해양시설의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

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5. 1.>

1. 해양시설의 소유자(사업장의 명칭 및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폐기물처리업자(사업장의 명칭 및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수거한 오염물질의 종류 및 수거량
4. 오염물질 수거에 참여한 해양시설의 직원에 관한 사항
5. 오염물질 수거일자

제21조의2(오염물질저장시설의 변경신고 사항 등) ①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이하 “오염물질저장시설”이라 한다)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
2.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 장소
3. 오염물질저장시설의 규모
4.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계획서의 내용

② 법 제38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의 경우: 10일
2.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 5일

[본조신설 2024. 6. 28.]

제21조의3(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 신고서 등) ① 영 제4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설치·운영 신고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4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설치·운영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

③ 영 제40조의3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4. 6. 28.]

제21조의4(오염물질저장시설 신고증명서의 재발급) 영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오염물질저장시설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다시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오염물질저장시설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해당 신고증명서를 첨부(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6. 28.]

제22조(오염물질관리대장의 기록 및 보존) ①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오염물질관리대장(이하 “오염물질관리대장”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 6. 28.>

1.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발생현황

2. 오염물질의 자가처리 및 위탁처리 현황

- ② 오염물질관리대장은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 ③ 오염물질관리대장은 마지막으로 적은 날부터 2년 동안 해당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 ④ 법 제38조제4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이하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라 한다)는 오염물질관리대장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5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을 이용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4. 6. 28.>

제23조(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기준)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이 설치·운영하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24. 6. 28.>

-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가 설치·운영하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신설 2024. 6. 28.>
[전문개정 2021. 10. 5.]

제23조의2(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24. 6. 28.]

제24조(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조사) ①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5조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을 활용하여 매년 잔류성오염물질의 오염도를 측정·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9., 2013. 3. 24., 2017. 9. 22., 2018. 5. 1.>

- ② 제1항에 따른 측정·조사의 항목 및 방법, 측정망의 위치·구역, 측정·조사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29., 2013. 3. 24.>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정·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오염저감대책을 수립하거나 배출원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8. 5. 1.>

1. 잔류성오염물질의 연평균 오염도가 2년 이상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양퇴적물 관리목표를 초과하는 경우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고장·파손,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여 잔류성오염물질이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 배출된 경우
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이 내려진 배출시설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또는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 위치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8. 5. 1.]

제25조(방오시스템의 사용기준·방법) 해양시설등에서 방오도로 또는 이를 사용한 설비(이하 “방오시스템”이라 한다)를 사용하거나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6. 30.>

1. 생물파괴제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수준의 방오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건조 도막(도로 도포막) 안에 총주석함량이 킬로그램당 2천 5백밀리그램 이하로서 화학적 촉매제로 작용하며 생물파괴제로 작용하지 않는 수준의 방오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제26조(국가긴급방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오염물질) ① 법 제61조제1항 전단에서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4. 11. 19., 2017. 7. 28.>

1. 기름
 2. 위험·유해물질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 ② 제1항제2호에서 “위험·유해물질”이란 유출될 경우 해양자원이나 생명체에 중대한 위험을 미치거나 해양의 쾌적성 또는 적법한 이용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로서 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과 산적(散積)으로 운송되며,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물질(액화가스류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7조(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영 제44조제3항에 따른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7. 1.>

1. 오염물질별 사고위험평가 및 대응전략
2. 방제조직의 운영 및 사고유형별 방제조치 계획
3. 방제장비, 자재, 약제 등의 동원 및 보급·지원 계획
4.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훈련(민·관 합동방제훈련을 포함한다)의 실시
5. 방제관련 해역 특성정보 및 자료

제28조(방제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 보고)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방제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및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1. 9. 29., 2013. 3. 24., 2014. 11. 19., 2017. 7. 28.>

1. 해양오염사고 발생개요
2. 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해양오염현황
4. 방제조치 현황 및 조치결과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4. 11. 19., 2017. 7. 28.]

제29조(해양시설로부터의 오염물질 배출신고) ① 법 제63조에 따라 해양시설로부터의 오염물질 배출을 신고하려는 자는 서면·구술·전화 또는 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하여야 하며, 그 신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오염사고의 발생일시·장소 및 원인
2. 배출된 오염물질의 종류, 추정량 및 확산상황과 응급조치상황
3. 사고선박 또는 시설의 명칭, 종류 및 규모
4. 해면상태 및 기상상태

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8.>

제30조(오염물질의 감식·분석) 해양경찰청장은 오염물질이 해상에 배출된 경우에는 그 규명에 필요한 감식·분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오염물질의 규명절차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8.>

제30조의2(방제조치 명령)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방제조치 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방제조치 명령서를 내줘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구두로 방제조치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그 명령서를 내줘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 7.]

제31조(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파손·화재 등의 사고인 경우에는 오염물질을 다른 선박이나 해양시설로 옮겨 싣는 조치 또는 손상부위의 긴급수리, 침수 또는 배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침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배출 우려가 있는 모든 부위를 막는 조치
3. 불을 끄는 중에 생긴 오염물질의 경우에는 다른 선박이나 해양시설로 옮겨 싣는 조치 또는 배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배출 또는 확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31조의2(해양오염 취약선박 위험성 평가) ①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 취약선박(이하 “해양오염 취약선박”이라 한다)에 대한 위험성 평가의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의 제원 및 운항 이력
2. 선체의 구조 및 안전 상태
3. 선박 내 오염물질의 적재 현황
4. 선박의 관리 체계
5. 그 밖에 오염물질 배출 방지를 위해 평가가 필요한 사항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염물질이 해양으로 배출될 위험성을 판단해야 한다.

1. 오염물질의 유출 가능성
2. 오염물질이 유출될 경우 예상되는 피해의 정도

3. 선박 관리의 적절성

[본조신설 2026. 7. 1.]

제32조(해양시설의 자재·약제 비치기준 등)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방제·방지를 위한 자재 및 약제(이하 “자재·약제”라 한다)를 갖추어두어야 하는 해양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염물질을 30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시설
2. 총톤수 100톤 이상의 유조선에 계류하기 위한 계류시설

②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해양시설 안에 갖추어두어야 하는 자재·약제의 비치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유처리제·유흡착제 또는 유겔화제(기름을 굳게 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해당 해양시설에 기준량의 10퍼센트 이상을 갖추어두고, 나머지는 제33조에 따른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개정 2021. 6. 30.>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보관시설에 유처리제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해양시설에 갖추어두어야 한다.

④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이하 “방제선등”이라 한다)를 배치·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배치·설치한 경우에는 법 제66조에 따른 자재·약제 등을 갖추어둔 것으로 본다.

제33조(보관시설의 자재·약제 비치기준 등)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 12., 2011. 9. 29., 2013. 6. 19., 2018. 5. 1.>

1.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해양시설에 갖추어두어야 할 자재·약제를 보관하기 위하여 해당 항만에 설치한 시설(공동으로 설치한 것을 포함한다)
2. 항만관리청이 항만시설, 어항시설의 방제를 위한 자재·약제를 보관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항만 및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항에 설치한 시설
3. 해양환경공단이 법 제9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자재·약제를 보관할 목적으로 해당 항만에 설치한 시설

②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항만관리청이 보관시설에 갖추어두어야 할 자재·약제의 비치기준은 별표 12와 같으며, 제1항의 보관시설의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 13과 같다.<개정 2011. 9. 29.>

제34조(방제선등의 배치해역) ① 법 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시설이 위치한 항만구역에 방제선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축용·비상용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시설에서 기름이 배출되는 경우 3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할 수 있다.

②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방제선등을 공동으로 배치·설치한 자와 해양환경공단에 배치·설치를 위탁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증거서류를 해당 기름저장시설의 사업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2018. 5. 1.>

1. 공동배치를 한 자 : 배치한 방제선등의 목록 및 제원
2. 배치·설치를 위탁한 자
 - 가. 위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
 - 나. 수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
 - 다. 수탁기간
 - 라.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통신방법

제35조(방제비용의 청구) 영 제50조에 따른 방제비용의 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 1. 12.>

제35조의2(해양자율방제대) ①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해양자율방제대(이하 “해양자율방제대”라 한다)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이하 이 조에서 “어촌계”라 한다) 단위로 구성·운영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서장은 별표 13의2에 따른 시설 및 방제자재를 갖추어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관할구역에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원(이하 “해양자율방제대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1. 어촌계에 소속된 어업인(「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3. 해양자율방제대 활동에 필요한 선박 또는 장비를 보유한 사람

③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68조의2제3항에 따라 해양자율방제대와 해양자율방제대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출동경비
2. 교육·훈련경비

④ 법 제68조의2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이 지급하는 재해보상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13의3과 같다.

⑤ 해양자율방제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해양경찰의 해양오염방제업무 보조
2. 해양오염사고 현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3. 방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에의 참여
4. 그 밖에 지역의 자율적인 해양오염방제 기능 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운영 및 임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 7.]

제36조(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①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법 제7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신청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4., 2021. 1.

7.>

1. 삭제<2020. 12. 4.>
2. 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이하 “해양오염방제업”이라 한다) 등록신청서 : 별지 제22호서식
3. 법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창청소업(이하 “유창청소업”이라 한다) 등록신청서 : 별지 제23호서식
4. 삭제<2020. 12. 4.>
5. 삭제<2020. 12. 4.>
- ② 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을 말한다.<개정 2008. 3. 14., 2013. 3. 24.>
 1.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오염물질
 2.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오염물질
- ③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 등록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 ④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70조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4. 11. 19., 2015. 1. 8., 2017. 7. 28., 2020. 12. 4.>
- ⑤ 영 제55조제4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2. 23.>
 1. 삭제<2020. 12. 4.>
 2. 해양오염방제업 등록증 : 별지 제27호서식
 3. 유창청소업 등록증 : 별지 제28호서식
 4. 삭제<2020. 12. 4.>
 5. 삭제<2020. 12. 4.>
- ⑥ 법 제70조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환경관리업자”라 한다)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면 해양경찰서장에게 재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8. 3. 14., 2014. 11. 19., 2015. 1. 8., 2017. 7. 28., 2020. 12. 4.>

제37조(해양환경관리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70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12. 4.>

1. 대표자(법 제74조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호 및 사업장의 소재지
2. 기술요원 보유현황
3. 선박 및 항해구역
4. 설비의 구조 및 설비능력
- ②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해양환경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관련되는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표자 또는 기술요원 보유현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60일로 한다)까지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12. 4., 2024. 6. 28.>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7. 6. 28., 2017. 7. 28., 2020. 12. 4.>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37조의2 삭제 <2020. 12. 4.>

제38조(해양환경관리업 처리실적의 제출) ① 삭제 <2020. 12. 4.>

② 삭제 <2020. 12. 4.>

③ 법 제70조에 따라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을 등록한 자(이하 “방제·청소업자”라 한다)는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제·청소·수거 처리실적서에 오염물질 방제·청소·수거 처리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양경찰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5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을 이용하여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실적을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1. 9. 29., 2014. 11. 19., 2017. 7. 28.>

④ 제3항에 따른 처리실적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12. 4.>

1. 삭제 <2020. 12. 4.>
2. 삭제 <2020. 12. 4.>
3. 삭제 <2020. 12. 4.>
4. 삭제 <2020. 12. 4.>
5. 삭제 <2020. 12. 4.>
6. 오염물질 방제·청소·수거 처리실적서 : 별지 제37호서식
7. 오염물질 방제·청소·수거 처리대장 : 별지 제38호서식

⑤ 제3항에 따른 처리실적서 등은 마지막으로 적은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5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을 이용하여 해당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보관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0. 1. 12., 2011. 9. 29., 2020. 12. 4.>

제39조(오염물질수거확인증) ①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은 별지 제39호 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은 작성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40조 삭제 <2020. 12. 4.>

제41조 삭제 <2020. 12. 4.>

제42조(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 해양경찰서장이 법 제73조에 따라 내릴 수 있는 처리명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9., 2015. 1. 8., 2017. 7. 28., 2020. 12. 4., 2021. 1. 7.>

1. 삭제 <2020. 12. 4.>
2.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리
3.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처리
4. 그 밖에 환경 관계 법령에 따른 육상에서의 처리

제43조(해양환경관리업의 권리·의무 승계신고) ①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43호서식의 해양환경관리업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0. 1. 12., 2014. 11. 19., 2015. 1. 8., 2016. 12. 23., 2017. 7. 28., 2020. 12. 4.>

1. 양도·양수, 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2.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증
3. 삭제 <2020. 12. 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해양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3., 2017. 7. 28., 2020. 12. 4.>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44조(해양환경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5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자의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제45조 삭제 <2020. 12. 4.>

제46조(해양오염영향조사) ① 영 제58조제5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영 별표 12에 따른 배출량의 2배에 해당하는 양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26. 7. 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별도의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0. 1. 12., 2013. 3. 24., 2013. 6. 19., 2026. 7. 1.>

제47조(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82조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제47조의2(위해도 평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침몰선박(「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해양사고로 해양에서 침몰된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 별표 16의2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평가점수에 따라 위해도(危害度) 평가를 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침몰선박의 관리 필요성에 관한 위해도 평가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위해도 평가 점수가 40점 이상인 경우
2. 침몰선박에서 오염물질이 유출되고 있는 경우
3. 침몰선박이 주요 항로에 위치하고 있어 다른 선박의 항행에 장애가 되는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으로 하여금 침몰선박, 잔존 기름 및 적재화물, 침몰해역, 해양오염 발생가능성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게 하거나 그 밖에 위해도 평가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도 평가 결과에 따라 침몰선박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하고, 침몰선박에 대한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1. 집중관리 대상선박: 제1항에 따른 위해도 평가 점수의 합계가 60점 이상이거나 제2항에 따른 위해도 평가 결과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침몰선박
2. 일반관리 대상선박: 제1항에 따른 위해도 평가 점수의 합계가 40점 이상 60점 미만이거나 제2항에 따른 추가 평가 결과 일반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침몰선박
3. 관리대상 제외선박: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침몰선박 외의 침몰선박

[전문개정 2019. 7. 9.]

제47조의3(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7조의2에 따른 위해도 평가 결과에 따라 법 제83조의2제1항제3호의 침몰선박에 대한 위해도 저감대책(이하 “위해도 저감대책”이라 한다) 실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해도 저감대책을 실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침몰선박의 위치, 침몰한 해역의 수심, 수온, 조류, 밑바닥 퇴적물 상태(저질 상태), 계절, 화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법 제77조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의 실시, 침몰선박의 인양, 침몰선박의 연료유 수거·회수, 침몰선박에 적재된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회수 등 위해도 저감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개정 2021. 6. 30.>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7조의2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침몰선박에 대하여 해양환경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침몰선박의 침몰 위치 및 선체의 상태 파악, 잔존 기름 또는 화물 등의 유출이나 이탈 가능성, 그 밖에 해양오염사고 유발 가능성에 대한 정밀조사 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5. 1., 2019. 7. 9.>

④ 삭제<2019. 7. 9.>

[본조신설 2013. 6. 19.]

제47조의4(위해도 저감대책 실행 비용의 산정 및 부과)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침몰선박의 위치, 침몰한 해역의 수심, 수온, 조류, 밑바닥 퇴적물 상태, 계절, 화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6. 30.>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해도 저감대책을 실행하는 경우 법 제83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침몰선박의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확정하고, 침몰선박의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침몰선박의 소유자가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고지 한 비용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13. 6. 19.]

제47조의5(침몰선박에 관한 정보 관리)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83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침몰선박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침몰선박 정보 현황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8.>

[본조신설 2013. 6. 19.]

제48조 삭제 <2025. 1. 14.>

제49조 삭제 <2025. 1. 14.>

제50조 삭제 <2025. 1. 14.>

제51조 삭제 <2025. 1. 14.>

제52조 삭제 <2025. 1. 14.>

제53조 삭제 <2025. 1. 14.>

제54조 삭제 <2025. 1. 14.>

제54조의2 삭제 <2025. 1. 14.>

제55조 삭제 <2025. 1. 14.>

제55조의2 삭제 <2025. 1. 14.>

제56조 삭제 <2025. 1. 14.>

제57조 삭제 <2025. 1. 14.>

제58조 삭제 <2025. 1. 14.>

제59조 삭제 <2025. 1. 14.>

제59조의2 삭제 <2025. 1. 14.>**제60조 삭제** <2025. 1. 14.>

제60조의2(지도·감독) 법 제10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의 재난사태에 해당하는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방제조치에 필요한 대비·대응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양환경공단을 지도·감독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8., 2018. 5. 1.>

1. 긴급방제 시 대응계획
 2. 긴급방제 시 인력 배치
 3. 긴급방제 대비 교육·훈련
 4. 긴급방제 시 자재·약제의 조달체계
 5. 긴급방제 시 방제선 및 방제장비의 배치 방법
 6. 긴급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 [본조신설 2011. 9. 29.]

제61조 삭제 <2024. 6. 28.>**제62조 삭제** <2024. 6. 28.>**제63조 삭제** <2024. 6. 28.>**제64조 삭제** <2024. 6. 28.>**제65조 삭제** <2024. 6. 28.>

제66조(자재·약제의 형식승인 신청 등) ①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재·약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30.>

1.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오일펜스, Oil Fence)
2. 유처리제
3. 유흡착재
4. 유겔화제
5. 생물정화제제(生物淨化製劑)

② 법 제110조제4항 본문에 따라 자재·약제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형식승인을 받은 이후에 그 자재·약제의 규격 등을 변경(해당 자재·약제의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변경·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첨부 서류를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2., 2012. 11. 29., 2014. 11. 19., 2017. 7. 28., 2025. 6. 2., 2026. 7. 1.>

1. 형식승인의 신청

가. 삭제 <2011. 9. 29.>

나. 사용재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2. 형식승인 변경의 신청

가. 형식승인증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법 제1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자재·약제의 형식승인을 면제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 서식의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변경·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 11. 29., 2014. 11. 19., 2017. 7. 28., 2026. 7. 1.>

1. 사용재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2. 시험·연구 또는 개발 계획서

[제목개정 2012. 11. 29.]

제67조(형식승인증서의 발급 등) ①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자재·약제의 형식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 6. 28., 2026. 7. 1.>

②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자재·약제의 명칭, 제작사, 형식, 형식승인번호 등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승인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1. 9. 29., 2013. 3. 24., 2014. 11. 19., 2017. 7. 28., 2024. 6. 28., 2026. 7. 1.>

제68조(형식승인의 표시)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의 내용을 표시한 별표 24의 형식승인(수입신고)표를 해당 자재·약제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24. 6. 28.>

제69조(성능시험) ① 법 제110조제5항에 따라 자재·약제에 대한 성능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자재·약제 성능시험신청서에 사양서, 재질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성능시험용 자재·약제와 함께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해당 자재·약제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자재·약제 성능시험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6. 28.]

제70조(검정) ① 법 제110조제6항에 따라 자재·약제에 대한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검정신청서를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 9. 29., 2013. 3. 24., 2014. 11. 19., 2017. 7. 28., 2024. 6. 28.>

② 제1항에 따른 검정의 기준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1. 9. 29., 2013. 3. 24., 2014. 11. 19., 2017. 7. 28., 2024. 6. 28.>

③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자재·약제를 검정한 결과가 제2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66호서식의 검정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해당 자재·약제에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별표 25의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29., 2013. 3. 24., 2014. 11. 19., 2017. 6. 28., 2017. 7. 28., 2024. 6. 28.>

제71조(자재·약제의 인정) ①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법 제110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약제에 대하여 형식승인·성능시험·검정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8., 2026. 7. 1.>

1. 협약당사국이 형식승인을 한 자재·약제로서 외국에서 도입·건조 또는 수리된 선박에 갖추어둔 자재·약제
2. 선박에 갖추어둔 자재·약제로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지만 협약당사국이 형식승인을 한 것 중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약제

② 제1항에 따라 자재·약제에 대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자재·약제의 형식승인·성능시험·검정인정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8., 2026. 7. 1.>

③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자재·약제의 형식승인·성능시험·검정 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8., 2026. 7. 1.>

제72조(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110조제9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와 그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6과 같다.

②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을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의 총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1. 9. 29., 2013. 3. 24., 2014. 11. 19., 2017. 7. 28., 2024. 6. 28., 2026. 7. 1.>

③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29., 2013. 3. 24., 2014. 11. 19., 2017. 7. 28., 2024. 6. 28., 2026. 7. 1.>

제72조의2(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의 성능인증) ①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법 제110조의 2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 자재·약제를 제외한 자재·약제(이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라 한다)에 대하여 제72조의3에 따른 기술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성능시험기준을 적용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8., 2026. 7. 1.>

② 법 제110조의2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8., 2026. 7. 1.>

7. 1.>

1. 사양서

2. 사용재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3. 수입신고서 사본(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기술전문위원회에 성능인증을 위한 성능시험기준을 마련하여 심의의뢰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신청인에게 기술전문위원회의 심의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8., 2026. 7. 1.>

④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성능인증을 위한 성능시험기준(제72조의6에 따른 검정을 위한 검정기준을 포함한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8., 2026. 7. 1.>

⑤ 제4항에 따라 성능시험기준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제72조의5에 따라 성능시험을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시험성적서를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8., 2026. 7. 1.>

⑥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시험성적서를 확인하고 그 성능이 인증되면 별지 제60호의2서식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인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8., 2026. 7. 1.>

⑦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제6항에 따라 성능인증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의 종류, 제작사, 형식 및 성능인증번호 등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인증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 11. 19., 2017. 7. 28., 2026. 7. 1.>

[본조신설 2011. 9. 29.]

제72조의3(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의 성능인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연구센터장 소속으로 기술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7. 28., 2026. 7. 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7. 7. 28., 2026. 7. 1.>

1.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의 성능시험의 기준

2.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의 검정의 기준

3. 그 밖에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의 성능인증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17. 7. 28., 2026. 7. 1.>

1. 해양경찰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법 제112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기관에서 추천한 전문가
 - 3. 해양 또는 환경 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 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경찰연구센터 소속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7. 7. 28., 2026. 7. 1.>
- [전문개정 2014. 11. 19.]

제72조의4(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 9. 29.]

제72조의5(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의 성능시험) ① 법 제110조의2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의 성능인증을 위한 성능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2호의2서식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시험신청서에 사양서, 구조도면 및 사용설명서를 첨부하여 성능시험용 자재·약제와 함께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②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제72조의2제4항의 성능시험기준에 따른 성능시험을 하고 별지 제64호의2서식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시험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본조신설 2011. 9. 29.]

제72조의6(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의 검정) ① 법 제110조의2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110조의2제3항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면 별지 제65호의2서식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검정신청서를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8., 2026. 7. 1.>

②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를 검정한 결과가 제72조의2제4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66호의2서식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검정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해당 자재·약제에 별표 25의2에 따른 성능인증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8., 2026. 7. 1.>

[본조신설 2011. 9. 29.]

제72조의7(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의 성능인증의 취소) ①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법 제

110조의2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의 성능인증을 취소하려면 미리 성능인증을 받은 자에게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취소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8., 2026. 7. 1.>

②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취소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2차로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8., 2026. 7. 1.>

③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2차 예고통보한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인증을 취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8., 2026. 7. 1.>

④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성능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8., 2026. 7. 1.>
[본조신설 2011. 9. 29.]

제72조의8(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법 제110조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법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법 제110조의3제2항에 따라 별지 제66호의3서식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6. 28., 2026. 7. 1.>

1. 양도·양수·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2. 제6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 또는 제72조의2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서의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 6. 28., 2026. 7. 1.>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8. 5. 1.]

제73조(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의 신고 등) ① 선박을 해체하려는 자는 법 제111조제

1항 본문에 따라 별지 제69호서식의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작업개시 7일 전까지 선박을 해체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8.>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작업계획서

가. 해체하려는 선박의 해체 전 유창 청소와 오염물질의 처리에 관한 사항

나. 해체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유출사고에 대비한 예방조치 사항

다. 오염물질의 유출사고 발생 시의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2. 해체장소 사용허가서 또는 그 증명서류
3. 해체할 선박의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오염물질의 처리실적서

② 법 제111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오염물질이 제거된 선박으로서 총톤수 100톤(군함과 경찰용 선박의 경우에는 경하배수톤수 200톤) 미만의 선박(유조선은 제외한다)을 육지에 올려놓고 해체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4. 11. 19., 2017. 7. 28.>

③ 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선박처리장의 시설·장비기준은 별표 27과 같다.

제74조(업무대행자의 지정) ① 법 제112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별표 29에 따른 지정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4. 6. 28.>

② 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자재·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각각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1. 4. 11., 2013. 3. 24., 2014. 11. 19., 2017. 6. 28., 2017. 7. 28., 2024. 6. 28.>

1. 삭제<2011. 4. 11.>
2.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3. 대행업무를 담당할 인력, 시설 및 장비현황
4. 사업계획서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업무대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자재·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업무 대행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4. 11. 19., 2017. 7. 28., 2024. 6. 28.>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변경지정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4. 11. 19., 2017. 7. 28., 2024. 6. 28.>

1. 업무대행자의 상호, 대표자 및 소재지
2. 지정번호
3. 지정연월일
4. 검사대행분야 및 대상기기
5. 지정조건
6.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4조의2(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해양경찰청장은 제7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업무대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처리실적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8., 2024. 6. 28.>

1. 법 제11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성능시험 및 검정
2. 법 제1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 및 검정

[본조신설 2013. 6. 19.]

제75조(업무대행자 지정취소 처분기준) ① 제74조에 따라 업무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의 법 제113조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처분기준은 별표 30과 같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4. 11. 19., 2017. 7. 28., 2024. 6. 28.>

제76조(출입검사·보고 등) ① 법 제1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 12.>

1. 삭제 <2010. 1. 12.>
2. 삭제 <2011. 9. 29.>
3. 삭제 <2010. 1. 12.>
4. 삭제 <2010. 1. 12.>
5. 해양시설운영자의 오염물질 처리상황
6.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선박해체의 신고를 한 자의 해체작업실적과 기름 등 폐기물의 처리상황
7. 삭제 <2010. 1. 12.>
8. 삭제 <2010. 1. 12.>

② 법 제1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확인·점검 및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 12., 2026. 7. 1.>

1. 해양시설의 경우
 - 가.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의 작성 및 비치 여부(별표 1 제1호가목 중 합계 용량 300킬로리터 이상의 시설에 한정한다)
 - 나. 해저송유관, 호스, 저장탱크, 돌핀 또는 원유송유용 부이의 정기적인 점검 여부
 - 다. 해양오염 사고 시 응급조치용 방제선, 방제장비, 자재·약제의 비치 여부
 - 라. 파이프, 호스의 연결 상태 및 안전장치의 설치 여부
 - 마. 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기름 등 폐기물의 처리 여부
 - 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보유 여부 및 임무파악 여부(별표 1 제1호의 시설로 한정한다)
2. 삭제 <2020. 12. 4.>
3. 삭제 <2020. 12. 4.>

4. 방제·청소업 시설의 경우

- 가. 폐유저장시설 및 수집 폐유량의 정기적인 점검 여부
- 나. 해양오염사고 시 응급조치용 방제선, 방제장비, 자재·약제의 비치 여부
- 다. 파이프, 호스의 연결 상태 및 안전장치의 설치 여부
- 라. 유출사고에 대비한 통신연락체제 및 긴급보고체제의 유지여부(해양오염방제업으로 한정한다)
- 마. 유출사고에 대비한 긴급대응태세 유지 여부(해양오염방제업으로 한정한다)

5. 삭제 <2020. 12. 4.>

6. 오염물질저장시설의 경우

- 가. 폐유저장탱크·폐유처리시설의 배관·호스의 연결 상태 및 안전장치의 설치 여부
- 나. 시설 및 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의 처리상황 및 인계·인수사항

제77조(해양환경감시원의 증표)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감시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74호서식과 같다.

제77조의2(명예해양환경감시원)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해양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1.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의 회원, 1년 이상 해당 민간단체의 회원이었던 사람 또는 1년 이상 해당 민간단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해양환경 관련 연구 또는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이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의 어촌계장으로서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람
4. 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가. 어업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일 것
 - 나. 법 제9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양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해양환경에 대한 교육을 이수했을 것

다.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이하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해양환경의 훼손 및 오염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2. 오염물질 해양배출 등 해양환경 저해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
3. 해안가 또는 해역에 방치된 폐기물의 수거
4. 해양환경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 건의

5.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활동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7. 9.]

제78조(교육·훈련 대상자 등) ①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 6. 19., 2021. 1. 7.>

1. 최초로 받는 교육·훈련과정: 3일 이내

2. 제1호 외의 교육·훈련과정: 2일 이내

② 삭제 <2021. 1. 7.>

③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게 이수증을 내어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5. 1.>

제79조(훈련계획) ①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영 제9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훈련과정별로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8. 5. 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 운영방침

3. 과정별 목표, 교과과목, 기간 및 인원

4. 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5. 성적의 평가방법

제80조 삭제 <2021. 1. 7.>

제81조(교육·훈련실적 제출)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매 분기의 교육·훈련실적을 분기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8. 5. 1., 2024. 6. 28.>

제82조(유사교육·훈련의 인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1. 삭제 <2013. 6. 19.>

2. 법 제121조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에 관한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교육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82조의2(신고포상금의 신청) 영 제91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해양경찰서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8.>

[본조신설 2011. 9. 29.]

- 제83조(수수료 등)** ① 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변경검인, 자재·약제의 형식승인·검정 및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의 성능인증, 성능시험 및 검정에 대하여 납부하는 수수료는 별표 32와 같다. <개정 2011. 9. 29., 2018. 5. 1., 2024. 6. 28.>
- ② 국외에서 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
-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8. 5. 1.>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납부하는 경우: 수입인지, 전자화폐, 신용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2. 정부가 지정한 검사대행기관에 납부하는 경우: 현금, 전자화폐,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 ④ 삭제 <2018. 5. 1.>

- 제83조의2(오염물질 수거·처리 비용의 산정 등)** ① 시·도지사,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 또는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는 법 제122조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 수거·처리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오염물질의 수거·운반·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오염물질의 종류별로 톤 또는 세제곱미터 단위로 산정한다. <개정 2024. 6. 28.>
- ② 시·도지사 또는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오염물질 수거·처리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종류별로 수거량과 금액을 명시하여 통지해야 하며, 납부기한은 통지한 날부터 15일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4. 6. 28.>
- ③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수거·처리 비용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오염물질 수거·처리 비용의 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도지사,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 또는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가 정한다.<개정 2024. 6. 28.>
- ⑤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이 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 수거·처리 비용의 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조신설 2021. 10. 5.]

- 제84조(자료제출)** ① 영 제96조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별표 33과 같다. <개정 2008. 3. 14., 2010. 1. 12., 2011. 9. 29., 2013. 3. 24., 2014. 11. 19., 2015. 1. 8., 2017. 7. 28.>
-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서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 3. 14., 2013. 3. 24.>

제85조 삭제 <2017. 9. 22.>

제8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 4. 6., 2022. 2. 24., 2024. 6. 28., 2026. 7. 13.>

1. 삭제 <2026. 7. 13.>
 2. 삭제 <2026. 7. 13.>
 3. 제8조에 따른 측정·분석능력 인증: 2017년 1월 1일
 4. 제23조제2항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기준: 2024년 1월 1일
 5. 삭제 <2020. 4. 6.>
 6. 삭제 <2020. 4. 6.>
 7. 제36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2017년 1월 1일
 8. 삭제 <2020. 4. 6.>
 9. 삭제 <2020. 4. 6.>
 10. 삭제 <2020. 4. 6.>
 11. 제54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2017년 1월 1일
 12. 삭제 <2020. 4. 6.>
 13. 삭제 <2023. 3. 10.>
 14. 제75조 및 별표 30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취소 처분기준: 2022년 1월 1일
 15. 제78조에 따른 교육·훈련대상자 등: 2017년 1월 1일
- [전문개정 2016. 12. 23.]

제86조의2 삭제 <2012. 11. 29.>

부칙 <제401호, 2008. 1. 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5 제1호 중 폐기물운반 선설비의 그 밖의 장치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8 비고 제1호가목은 200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하며,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은 2010년 1월 20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8 제1호 중 제2기준과 같은 표 비고 제1호나목은 201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하며, 제25조는 「선박 유해방오시스템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이 우리나라에서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 (유효기간) 제82조제1호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해양배출이 불가능한 폐기물의 배출에 관한 특례) 별표 6 제2호 및 별표 7 제2호가목2) 단서에도 불구하고 수산화알루미늄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광물성의 폐기물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물질은 별표 8 제3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②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규정”으로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3”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4”로 하고, 별표 1의2 제5호 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④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⑥ 항만운송사업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을 삭제한다.

⑦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6호 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5호 중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참조법령>

○해양수산부령 제402호(2008. 1. 31.)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부칙 <제4호, 2008. 3. 14.>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호, 2009. 6. 24.> (규제일몰제 우선적용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호, 2009. 12. 1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 중 “ 「수로업무법」 제8조의2에 따른 일반수로조사 ” 를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른 수로조사 ” 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211호, 2010. 1.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호, 2010. 9.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호, 2010. 10. 1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 을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으로 한다.

제48조제3항 중 “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4항 ” 을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 으로 한다.

별표 17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가목 중 “ 「공유수면관리법」 ” 을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로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

별표 19 제1호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란 중 “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 을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

목 중 “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9호 ” 를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9호 ” 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350호, 2011. 4. 1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6호, 2011. 9.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양환경측정기기의 검인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측정기기(자재·약제)의 검인표시를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423호, 2011.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위탁자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폐기물의 위탁처리를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변경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37조제1항제1호라목 및 마목의 사항에 대한 변경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83호, 2012. 6.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3 제2호 및 별지 제55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32 제2호 및 별지 제58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의 성능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32 제2호 및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별지 제51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39호, 2012. 1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역이용영향평가서 협의 요청시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 1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처분기관이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55호, 2012. 1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에 관한 특례) 별표 6 제1호 각 목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별표 6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폐기물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재활용·소각·육상 매립 등의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 해양 배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기간 동안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폐기물은 별표 7에 따른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되어 배출해역에 배출되어야 하고, 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및 별표 8의 처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제3조(저장시설 잔류 폐기물에 관한 특례) ① 해양배출이 금지된 폐기물 중 2014년 1월 1일 전에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저장시설(제36조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정한다) 바닥에 침적되어 있는 잔류 폐기물(이하 이 조에서 “저장시설 잔류 폐기물”이라 한다)을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업 또는 전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해양에 배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2014년 3월 31일까지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업 또는 전업으로 인하여 부칙 제2조에 따른 폐기물 배출 종료 시의 저장시설 잔류 폐기물을 불가피하게 해양에 배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 따른 폐기물 배출이 종료된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② 저장시설 잔류 폐기물은 별표 7에 따른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되어 배출해역에 배출되어야 하고, 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및 별표 8의 처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칙 <제1호, 2013. 3. 24.>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제20조,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제2항,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1 제2호사목2)의 위반사항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6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제2호·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10조제1항 단서,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제1호,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2제1항·제3항, 제46조제2항, 제48조제4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2항 후단,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9조의2제4호,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5조제2항·제3항·제5항, 제6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9조제1항·제2항,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2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7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75조제2항, 제79조제1항, 제8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81조, 제82조제1호·제2호, 제83조제4항, 제84조제1항·제2항, 제85조제3항·제4항, 별표 1 제1호라목의 범위란, 별표 2 제12호, 별표 3의 폐기물의 종류란 제1호, 별표 6 제3호, 같은 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호 나목·다목, 별표 8 비고란 제1호 나목, 별표 10 제2호 다목 비고 3), 별표 23,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중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제3호, 별지 제25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중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제3호,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55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56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57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59호서식 앞쪽, 별지 제61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63호서식, 별지 제65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66호서식, 별지 제70호서식 앞쪽, 별지 제7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74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3호,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55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처리기관란, 별지 제56호서식 뒤

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57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61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65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70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지 제66호서식 중 “The Minister of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별지 제74호서식 뒤쪽 중 “Minister of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국토해양부령 제555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3> 생략

부칙 <제29호, 2013. 6.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호, 2013.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호,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호, 2014. 9.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점검 실시 시기에 관한 특례) 별표 9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해양시설로서 안전점검의 대상이 되는 해양시설에 대한 최초의 안전점검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09호, 2014. 11.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호, 2014. 12.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역이용협의를 관한 적용례) ①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처분기관이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에 대하여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의 허가기간 변경에 관한 해역이용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처분기관이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 및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의 허가기간 변경에 관한 해역이용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해역이용협의를 의견통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종전의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처분기관이 해역이용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7호, 2014. 12. 31.> (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호, 2015. 1. 8.>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 까지 생략

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6조제4항·제6항,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1항 전단,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6항,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4조제3항, 제55조제1항·제2항, 제55조의2제2항, 제6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제1항제1호·제2호, 제84조제1항, 별표 7 제3호나목, 별표 9의2 제3호가목, 별표 33 제3호·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보고자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구비서류란,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

30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51호서식 앞쪽·뒤쪽, 별지 제51호의2서식, 별지 제51호의3서식, 별지 제5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54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표 16의2 해상 교통환경의 비고란 중 “지방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6호의2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50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51호의3 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5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해양환경과)”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환경과)”으로 한다.

1* 및1(생략

부칙 <제138호,2015. 2.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호,2015. 4.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호,2016. 5.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호,2016. 6. 30.>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제2호가목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3호, 2016.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환경관리업의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양시설의 변경신고 및 해양환경관리업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의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양시설의 변경신고 또는 해양환경관리업의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의 시설·장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가 종전의 별표 20 제2호나목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별표 20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장비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 따른 시설·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220호, 2017. 1.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호, 2017. 6. 28.>

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호, 2017. 7. 28.>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호, 2017. 9. 22.>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호, 2018. 5.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8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0항제10호 및 제22조제8항제7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각각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331호, 2019. 3.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호, 2019. 7.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창청소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창청소업을 등록한 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4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제402호, 2020. 4. 6.>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9호, 2020. 12.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2조제1항”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을 “영 제5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확인서(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의 기술요원 보유현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확인서”로 한다.

① 법 제70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법 제74조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호 및 사업장의 소재지
2. 기술요원 보유현황
3. 선박 및 항해구역
4. 설비의 구조 및 설비능력

②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해양환경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관련되는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까지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7조의2를 삭제한다.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법 제76조의2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제115조제7항”을 “법 제115조제7항”으로 한다.

제40조 및 제4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76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마목 중 “폐기물해양배출업자”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자”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4 제1호·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5 제1호바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
|--|---------------|--------|-------------|-------------|-------------|
| | | 1차 | 2차 | 3차 | 4차 |
| 1) 법 제7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법 제71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75조 제1항제1호 | 등록취소 | | | |
|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 법 제75조 제1항제2호 | 등록취소 | | | |
| 3)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법 제75조 제1항제3호 | 등록취소 | | | |
|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75조 제1항제4호 | 등록취소 | | | |
| 5)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1항제5호 | | | | |
| 가) 고의로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한 경우 | | 등록취소 | | | |
| 나) 과실로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게 한 경우 | | 경고 | 경고 | 등록취소 | |
| 다) 오염물질의 처리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한 경우 |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등록취소 |
| 라) 기술요원이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 | 경고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 마) 선박이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바) 설비 및 장비가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사) 설비 및 장비가 등록요건에 맞도록 유지되지 않은 경우 | | 경고 | 경고 | 경고 | 영업정지
6월 |
| 6) 법 제72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75조 제1항제6호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등록취소 |

| | | | | | |
|--|---------------|----|----------|----------|----------|
| 7) 법 제73조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 | 법 제75조 제1항제7호 | 경고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 8)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 법 제75조 제1항제8호 | 경고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별표 33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부터 별지 제26호서식까지,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의 제목을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변경등록신청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폐기물해양배출업 、 []해양오염방제업 、 []유창청소업 、 []폐기물해양수거업 、 []퇴적오염물질수거업 등록사항”을 “[]해양오염방제업 、 []유창청소업 등록사항”으로,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 첨부서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 중 “경우에 한정하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를 “경우로 한정합니다”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해양경찰서”를 “해양경찰서”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부터 별지 제3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40호서식부터 별지 제42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3호서식의 제목을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권리·의무 승계신고서}”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하며, 같은 쪽 첨부서류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해양경찰서”를 “해양경찰서”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457호, 2021. 1.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6호, 2021. 2. 19.>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의2 제2호라목 비고 중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 ”를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 ”로 하고, 같은 호마목 비고 1) 중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 ”를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 ”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486호,2021. 6. 3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7호,2021. 10. 5.>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9호,2022. 1. 20.>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6호,2022. 2. 24.>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2호,2023. 3. 1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2호,2023. 4. 25.>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644호,2023.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1호,2024. 4. 23.>

이 규칙은 202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4호,2024. 6.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6호,2025. 1. 14.>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부터 제54조까지, 제54조의2, 제55조, 제55조의2,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및 제60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7부터 별표 21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6호의2서식, 별지 제47호서식부터 별지 제51호서식까지, 별지 제51호의2서식, 별지 제51호의3서식, 별지 제52호서식부터 별지 제5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54호의2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736호,2025. 6. 2.>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0호,2025. 10. 31.> (정부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4호, 2025. 12. 26.>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
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4호, 2026. 7. 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6조제1항·제2항, 제76조제2항 및 별표 16 제2호의 개정규정: 2026년 7월 1일
2. 제31조의2 및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개정규정: 2026년 8월 28일

제2조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등의 성능시험·검정 신청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0조제5항·제6항 및 제110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 및 검정 신청을 한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별표 32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07호, 2026. 7. 13.>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
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0. 12. 4.>

해양시설의 범위(제3조 관련)

| 구분 | 시설의 종류 | 범위 |
|--|---|---|
| 1. 기름, 유해액체물질, 폐기물, 그 밖의 물건의 공급(공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 또는 저장 등의 목적으로 해역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배치된 시설 또는 구조물(해역과 일시적으로 연결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포함한다) | 가.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비축을 포함한다) 시설 | 계류시설(돌핀), 선박과 저장시설을 연결하는 이송설비, 저장시설, 자가처리시설 |
| | 나. 법 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 저장시설, 교반시설, 처리시설 |
| | 다. 선박 건조 및 수리시설, 해체시설 | 저장시설, 상가시설 및 수리시설(이동식 시설은 제외한다) |
| | 라. 시멘트·석탄·사료·곡물·고철·광석·목재·토사의 하역시설 |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계류시설, 하역설비(컨베이어 벨트를 포함한다) |
| | 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 저장시설 | 폐기물저장시설, 교반시설 및 이송관 |
| 2. 해양레저, 관광, 주거, 해수이용, 그 밖의 목적으로 해역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배치·투입된 시설 또는 구조물 | 가. 연면적 100㎡ 이상의 해상관광시설, 주거시설(호텔·콘도), 음식점(「선박안전법」상 선박은 제외한다) | 해역 안에 설치된 시설,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취수 및 배수 시설(배관을 포함한다) |
| | 나. 관경의 지름이 600mm 이상의 취수·배수시설(관이 2개 이상인 경우는 각각의 지름을 합한다) | 취수 및 배수시설(배관을 포함한다) |
| | 다. 유어장 | 유어시설, 가두리낚시터 |
| | 라. 그 밖의 시설 | 해상송전철탑, 해저광케이블, 해상부유구조물 |
| 3. 그 밖에 해역 안에 설치·배치·투입된 시설 또는 구조물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관측을 위한 종합해양과학기지 | 기상관측 등 그 밖의 목적시설 |

비고

1. 자가처리시설이란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그의 해양시설에서 발생하거나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을 선박으로부터 공급받거나 선박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처리시설이란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수거한 유성혼합물을 처리하기 위한 유수분리시설 등의 시설을 말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삭제 <2017. 9. 22.>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삭제 <2020. 12. 4.>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해양시설등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해역별 배출기준(제11조제2항
관련)

| 폐기물 \ 해역별방류
기준 | 해역별 | 방류기준 |
|-------------------|--------------------------------------|------------------------------|
| 분뇨·오수 |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
해역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50mg/l 이
내 배출 |
| | 그 밖의 해역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00mg/l
이내 배출 |

비고: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배치된 시설 및 구조물에는 이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1. 1. 7.>

해양시설등에서 발생하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의 처리기준 및
방법(제11조제3항 관련)

1. 해양시설등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법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창청소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유분 성분이 100만분의 15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2. 해양시설등에서 발생하는 유해액체물질의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자, 법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창청소업자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자가 처리시설에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중 가지역에 적용하는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3. 해양시설등에서 발생하는 기름이나 유해액체물질을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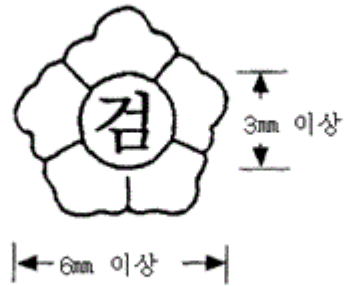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삭제 <2020. 12. 4.>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삭제 <2020. 12. 4.>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삭제 <2020. 12. 4.>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18. 5. 1.>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표시(제19조제6항 관련)



비고: 위의 검인표시 외에 검인일자와 검인기관의 약호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2] <개정 2021. 1. 7.>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방법 및 결과보고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의3제2항 관련)

1. 실시 시기

반기(半期)별로 1회 실시한다. 다만, 반기 개시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시설의 신고를 한 해양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반기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안전점검의 방법 등

안전점검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반기에 다른 법령에 따라 점검 또는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사항에 한정하여 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가목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 그 점검 및 검사 내역을 첨부하여야 한다.

가. 해양시설의 침하·균열 여부 및 노후화 정도 등 해양시설의 상태

나. 해저송유관, 호스, 저장탱크, 돌핀 또는 원유송유용 부이의 상태

다. 소화 설비·장비, 방제선, 방제 장비·자재 및 약제 비치 여부

라. 해양시설 주변의 공사 현황 및 영향

마.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비치 및 현행화 여부

바.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 유출사고 발생 시 신고·보고 체계 확립 여부

사. 해양오염방제에 대한 교육·훈련 상태

3. 안전점검 결과보고

가.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안전점검 결과 제20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안전점검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영 제94조제6항에 따라 해당 업무가 제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해양시설의 명칭, 종류, 시설 규모, 소재지 및 해양시설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
- 2) 안전점검 실시 일정
- 3) 안전점검 결과
- 4) 향후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4. 6. 28.>

시·도지사 또는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이 설치·운영하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기준 (제23조제1항 관련)

1. 일반사항

- 가. 해당 항만에 출입하는 내·외항 선박, 해양시설 및 선박수리조선소를 이용하는 선박, 해양사고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진 것일 것
- 나. 선박이 안전하고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오염물질 수집·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운반할 경우 편리한 장소에 위치할 것
- 다.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비 가림시설을 갖춘 것
- 라. 오염물질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저장할 수 있을 것
- 마. 저장시설의 배관 장치는 짧은 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의 것일 것
- 바. 선박과 저장시설을 연결하는 관이 있는 경우 관 접속부는 국제협약에서 정한 국제규격에 적합한 것일 것

2. 설치기준

가. 인력

| 구분 \ 저장능력 합계 | 200m ³ 이하 | | 200m ³ 초과 | |
|--------------|----------------------|-------|-----------------------|-------|
| | 항목 | 기준 | 항목 | 기준 |
| 자격능력 | 운영관련 자격증
(기능사 이상) | 1명 이상 | 운영관련 자격증
(산업기사 이상) | 1명 이상 |

비고

- 오염물질저장시설의 관리·유지를 위하여 운영 관련 자격취득자를 채용·확보하여야 하며, 그 자격증의 취득범위는 국가기술자격검정을 통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득한 자격증으로 제한된다.
 - 자격범위: 기계, 금속, 전기, 토목, 정보처리, 해양, 안전관리, 환경직무분야
- 저장능력 200m³ 이하의 시설에서는 기능사 1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200m³ 초과의 시설에서는 산업기사 1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시설 및 장비

| 구분 \ 저장능력 합계 | 200m ³ 이하 | | | 200m ³ 초과 | | |
|--------------|----------------------|----|---------------------|----------------------|----|---------------------|
| | 항목 | 기준 | | 항목 | 기준 | |
| 물리적 | 기름여과장치 | 1기 | 3 m ³ /h | 기름여과장치 | 1기 | 5 m ³ /h |

| | | | | | | |
|-------------|--------|----|----|--------|----|-------------|
| 처리시설 | 유수분리시설 | 1기 | 이상 | 유수분리시설 | 1기 | 이상 |
| | 침전시설 | 1기 | | 침전시설 | 1기 | |
| | 여과시설 | 1기 | | 여과시설 | 1기 | |
| 화학적
처리시설 | | | | 침강시설 | 1기 | 5m³/h
이상 |
| | | | | 중화시설 | 1기 | |
| | | | | 흡착시설 | 1기 | |

비고

1) 물리적처리시설: 저장능력에 관계 없이 적용

- 가) 기름여과장치: 기름이 섞여있는 폐수를 적정의 유분함유량 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해양오염방지설비
- 나) 유수분리시설: 기름이 섞여있는 폐수를 기름과 물로 분리할 수 있는 설비
- 다) 침전시설: 중력에 의한 자연침전으로 기름과 물을 분리할 수 있는 설비
- 라) 여과시설: 유성혼합물의 부유물 및 그 밖의 고형성분을 분리하는 설비

2) 화학적처리시설: 저장능력 200m³ 초과 시설에 적용

- 가) 침강시설: 유성혼합물에 용액이나 겔 등의 화학제품을 사용하여 혼탁·침전시키는 설비
- 나) 중화시설: 응집, 산화, 환원반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최적의 수소이온농도(pH)를 조정해 주는 설비
- 다) 흡착시설: 여과시설을 거친 처리수 또는 화학적·생물학적 처리수에 대하여 잔존 생물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의 제거 및 탈취하는 설비
- 200m³ 초과 시설에서 필요한 화학적처리시설의 개별설비 외에 종합설비 또는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경우 상기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차량

| 구분 \ 저장능력 합계 | 200m ³ 이하 | | 200m ³ 초과 | |
|--------------|----------------------|----------------|----------------------|----------------|
| | 항목 | 기준 | 항목 | 기준 |
| 수집·운반 | 진공탱크로리
카고트럭 | 5톤 이상
1톤 이상 | 진공탱크로리
카고트럭 | 8톤 이상
1톤 이상 |

비고

- 1)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수집·운반하는 진공탱크로리, 카고트럭을 각각 1대씩 보유하여야 한다.
- 2) 복수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진공탱크로리 및 카고트럭의 기준용량을 합산한 양으로 판단한다.
- 3) 오염물질을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저장시설까지 운반하는 차량은 해양수

산부장관으로부터 수집·운반허가를 받아 운영할 수 있다.

- 4) 필요 시 폐기물의 부피를 줄이기 위한 압축기 또는 포장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 공통사항

- 1) 저장능력합계는 저장탱크의 유량 유종에 관계없이 총 합계를 포함한다.
- 2) 저장시설은 외부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내구성 있는 물질로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 3)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소방기본법」 제13조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소방시설과 안전율을 고려한 저장탱크 방호벽의 설치를 하여야 한다.
- 4) 저장시설의 용량 및 폐기물의 운송수단은 저장시설의 설치 장소, 폐기물의 유형 및 항만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운영기준

가. 인력배치

- 1) 오염물질 저장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 관리인력을 적정 배치하되 저장능력 200m³ 초과 시설에서는 최소 4명이상의 관리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 2) 시설 관리인력은 저장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의 관리·유지 및 선박 등에서 오염물질의 수거업무를 수행한다.
- 3) 시설 관리인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작업 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4) 시설 관리인력은 「소방기본법」 제17조 따른 소방교육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을 시설 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이수하여야 하며, 작업환경측정 등 안전보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유수분리 및 배출

-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배출되거나 해양에 배출된 오염물질 중 유성분이 5% 미만인 유성혼합물은 중력식 가압식 등의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유수분리하여야 한다.
- 2) 유수분리 후 분리된 유분(고형물, 슬러지 포함)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인계하여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 3) 저장능력 합계 200m³ 이하 시설에서 유수분리된 배출수는 유분 성분이 100만분의 15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고, 저장능력 합계 200m³ 초과 시설에서 유수분리된 배출수의 배출기준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다.

다. 시설 및 장비 관리

- 1) 기름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하여 선적항, 수리항 및 기타 항구에 입항한 선박의 유성잔유물과 유성혼합물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함에 있어 선박의 출항이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유수분리시설 가동률을 유지한다.
- 2) 오염물질저장시설 내 시설 및 각종 장비의 고장으로 인한 시설가동의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장비의 안전점검 및 이상 유무를 수시 확인하여야 하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에 명시된 저장탱크의 위치·구조·설비의 변경 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부터 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

라. 비치서류

- 1)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계획서
- 2) 해양시설신고증명서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증명서
- 3) 해양시설오염방지관리인 교육수료증
- 4) 오염물질저장시설 관리·운영관련 각종 대장 등

마. 공통사항

- 1) 저장시설 운영 시 오염물질의 유출 및 악취의 발산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 2) 비와 눈 및 그 밖의 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폭발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기타: 「어촌·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에 설치한 오염물질저장시설 및 군·경 함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저장하기 위하여 육상에 설치한 오염물질저장시설에 대하여는 제1호 라목 및 마목, 제2호,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신설 2024. 6. 28.>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가 설치·운영하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기준(제23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오염물질저장시설은 해당 항만에 출입하는 내항 또는 외항 선박, 해양시설 및 선박수리조선소를 이용하는 선박, 해양사고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충분히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춰야 한다.
- 나. 오염물질저장시설은 선박이 안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하거나 오염물질의 수집·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운반이 편리한 장소에 위치해야 한다.
- 다. 오염물질저장시설의 바닥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포장되어야 하고, 비가림시설을 갖춰야 한다.
- 라. 오염물질저장시설은 오염물질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 마. 오염물질저장시설의 배관 설비는 짧은 시간 내에 처리작업이 완료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여야 한다.
- 바. 선박과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연결하는 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의 접속부는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국제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2. 시설 및 장비의 설치기준

가. 저장용 시설(이하 “저장시설”이라 한다)

- 1) 저장시설의 용량은 1일 8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가동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하는 시간으로 한다) 최대 처리량의 3일분 이상의 규모이어야 하고, 반입된 오염물질의 밀도를 고려하여 전체 용적의 90퍼센트 이내로 저장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해야 한다.
- 2) 오염물질별 또는 처리방법별로 구분·저장할 수 있도록 구획·표시되어야 하고, 오염물질의 혼합으로 인한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저장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오염물질이 폐기물인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저장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 3) 저장시설은 저장되는 오염물질로 인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 4) 유입되는 오염물질과 보관 중인 오염물질의 양을 계측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 5) 작업 시 안전을 고려하여 덮개·가스배출구 및 폐수처리시설로 이송하기 위한 고정식 파이프라인의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나. 처리용 시설(오염물질 중 기름·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을 위한 처리시설을 말하며, 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

- 1)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물리화학적처리시설 또는 생물화학적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처리시설 중 하나 이상을 추가하여 설치해야 한다.

가) 증발농축시설

나) 건조시설

다) 소각시설

- 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가)부터 다)까지의 시설과 같은 수준 이상의 효율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 2) 처리시설의 총 처리능력은 7.5m³/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3) 1)의 처리시설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가) 물리화학적처리시설

- (1) 처리능력은 4m³/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2) 물리화학적처리에 필요한 약품의 양이 일정하게 주입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나) 생물화학적처리시설

- (1) 처리능력은 4m³/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2) 생물화학적처리에 필요한 약품의 양이 일정하게 주입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다) 증발농축시설

- (1) 시설의 유입수와 응축수(응축수 발생시설에 한정한다)의 적산유량을 계측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 (2) 증발농축 잔류물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 (3) 응축수가 발생하는 처리공정의 시설은 응축수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라) 건조시설

- (1) 건조 잔류물의 수분 함량이 75퍼센트 이하의 성능이어야 한다.

- (2) 건조 잔류물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마) 소각시설

- (1) 처리능력은 2m³/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2) 소각시설의 연소실 출구 배출가스 온도조건은 최소 850℃ 이상, 체류 시간은 최소 1초 이상이어야 한다.
- (3)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일정시간 체류할 수 있고 충분히 혼합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 (4) 연소실의 공기 및 폐수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5) 폭발·화재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구조로 설치해야 하며, 소화기 등 소화 장비를 갖춰야 한다.
- (6) 휴대용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산소측정기를 비치하고, 온도를 자동 계측·기록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 (7) 유입된 오염물질의 적산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바) 그 밖의 부대시설

- (1) 처리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 및 대기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방지시설과 측정구를 설치해야 한다.
- (2) 처리시설의 잔류물이나 슬러지 등을 적정하게 보관할 수 있는 보관소를 설치해야 하며, 주변 토양오염물질이나 빗물 등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 4) 처리시설에는 처리작업의 안전을 위해 보호구 및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 5) 처리시설 전면에 처리공정도 및 폐수배관도를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부착해야 하고, 오염물질의 처리에 필요하지 않은 배관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 6) 오염물질을 처리하여 최종 배출하는 방류구는 외부에서 방류상태 관찰 및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가 쉽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 실험실 및 실험기기 등

- 1) 오염물질저장시설 안에 실험실을 확보해야 하며 별도의 공간으로 구획되어야 한다.
- 2) 실험실의 바닥과 내면은 불연성 자재로 설치되어야 하고 실험에 지장이 없는 구조여야 한다.
- 3) 실험실에는 환기장치가 있어야 하며, 항상 실험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4) 실험실의 급수 수도전과 세척시설에는 배수시설이 있어야 한다.
- 5) 4)의 배수시설을 통해 발생하는 폐수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
- 6) 오염물질의 측정이나 실험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실험실의 폐수는 가목의

저장시설로 유입될 수 있도록 고정식파이프라인을 설치하거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7) 다음의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기구 및 시약을 갖춰야 한다.

- 가) 수소이온농도(pH)
- 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 다) 총유기탄소량(TOC)
- 라) 부유물질(SS)
- 마) 폐놀
- 바) 시안
- 사) 총크롬 및 6가크롬
- 아) 아연
- 자) 구리
- 차) 카드뮴
- 카) 비소
- 타) 납
- 파) 용해성 망간
- 하) 플루오르
- 거) 수은

※ 비교

1. 위 7)의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기구 및 시약을 보유한 「해양환경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측정·분석기관과 측정대행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중에는 측정대행 또는 공동사용하기로 계약된 항목에 대한 실험실 및 실험기기 등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
2. 위 7)의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기구에 대해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중에는 임차계약된 항목에 대한 실험기기 또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본다.

라. 운반장비

- 1) 오염물질을 수집·운반하는 8톤 이상의 진공탱크로리와 1톤 이상의 카고 트럭을 각각 1대 이상 보유해야 한다.
- 2) 여러 대의 진공탱크로리와 카고 트럭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진공탱크로리 및 카고 트럭의 기준용량은 차량별 용량을 각각 합산한 양으로 판단한다.
- 3) 선박과 저장시설을 연결하는 이송배관이 설치된 경우에는 진공탱크로리를 갖춘 것으로 본다.

- 4) 폐기물의 부피를 줄이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압축기나 포장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3. 운영기준

가. 인력의 배치 및 운영기준

- 1)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 오염물질저장시설 규모 | 배치기준 |
|--|--|
| 가) 저장능력 200m ³ 이하의 오염물질저장시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공학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해양환경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배치할 것 |
| 나) 저장능력 200m ³ 초과
의 오염물질저장시설 | 전문인력 1명을 포함하여, 오염물질저장시설의 관리·유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인력(이하 “관리인력”이라 한다)을 4명 이상 배치할 것 |

- 2) 관리인력은 저장시설·처리시설의 관리·유지 및 해양오염방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3) 전문인력과 관리인력은 오염물질저장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나. 유수분리 및 배출기준

- 1) 오염물질 중 기름·유해액체물질 또는 포장유해물질은 물리화학적처리시설·생물학적처리시설 등의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유수분리를 해야 한다.
- 2) 1)에 따른 유수분리 후 분리된 잔여물이나 고형폐기물 등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인계하여 처리해야 한다.

다. 시설 및 장비 관리기준

- 1) 기름으로 인한 오염방지를 위해 선적항이나 그 밖의 항구에 입항한 선박의 유성잔유물과 유성혼합물을 수용할 수 있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때에는 선박의 출항이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가동률을 적절히 유지해야 한다.
- 2) 오염물질저장시설 내 시설 및 장비의 고장으로 인한 시설 가동 등의 지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시설·장비의 안전점검 및 이상 유무를 수시로 확인해

야 한다.

- 3) 오염물질저장시설에 저장된 오염물질의 저장기간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기준

- 1) 다음의 서류를 보관·비치해야 한다.

- 가) 영 제4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운영계획서
- 나) 영 제40조의3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
- 라) 가목1) 표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전문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자격증 사본
- 마) 법 제35조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 바) 법 제36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확인서
- 사)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오염물질관리대장
- 아) 그 밖에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서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2)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 시 오염물질의 유출 및 악취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 3) 오염물질저장시설에 빗물·눈 또는 그 밖의 물질이 유입되지 않아야 하며, 폭발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 및 운영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의3] <신설 2024. 6. 28.>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3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의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시설폐쇄 명령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38조의
3제1항제1호 | 시설
폐쇄
명령 | - | - | - |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법제처 | 법 제38조의
92 | 시설 | - | - | - |

| | | | | | |
|--|--------------------|--|--|---|--|
|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변경
신고를 한 경우 | 3제1항제2호 | 폐쇄
명령 | | | |
| 다. 1년에 2회 이상 시설의
운영정지 명령을 받은 경
우 | 법 제38조의
3제1항제3호 | 시설
폐쇄
명령 | - | - | - |
| 라. 시설의 운영정지기간 중
에 시설을 운영한 경우 | 법 제38조의
3제1항제4호 | 시설
폐쇄
명령 | - | - | - |
|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
우 | 법 제38조의
3제1항제5호 | 개선
명령 | 개선
명령 | 운영
정지
1개월 | 운영
정지
2개월 |
| 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의
무를 위반한 경우
1) 법 제38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
우
가) 별표 10의2 제2호에 따
른 시설 및 장비의 설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
우
나) 별표 10의2 제3호가목
에 따른 인력의 배치 및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
은 경우
다) 별표 10의2에 따른 오
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
·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또는 나)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
2) 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
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
우
3) 법 제38조의2제2항제1호
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
우 | 법 제38조의
3제1항제6호 | 개선
명령

개선
명령

개선
명령

개선
명령 | 운영
정지
10일

개선
명령

개선
명령

운영
정지
10일 | 운영
정지
1개월

운영
정지
10일

운영
정지
10일 | 운영
정지
2개월

운영
정지
20일

운영
정지
15일

운영
정지
2개월 |

| | | | | | |
|--|----------------|-----------------|-----------------|----------------|---|
| 가) 오염물질저장시설에 저장되는 오염물질 및 오염수를 고의로 해양에 배출한 경우 | | 시설
폐쇄
명령 | - | - | - |
| 나) 오염물질저장시설에 저장되는 오염물질 및 오염수를 과실로 해양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배출한 경우 | | 개선
명령 | 개선
명령 | 시설
폐쇄
명령 | - |
| 다) 오염물질저장시설에 저장되는 오염물질 및 오염수를 해양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 | 운영
정지
3개월 | 시설
폐쇄
명령 | - | - |
| 4)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 | 운영
정지
3개월 | 시설
폐쇄
명령 | - | - |
| 사. 신고 후 1년 이내에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운영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 법 제38조의3제1항제7호 | 개선
명령 | 운영
정지
6개월 | 시설
폐쇄
명령 | - |
| 아. 오염물질저장시설의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 | 법 제38조의3제1항제8호 | 운영
정지
6개월 | 시설
폐쇄
명령 | | |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1. 6. 30.>

해양시설의 자재·약제 비치기준(제32조제2항 관련)

| 비치대상 | 구분 | 종류 | 비치량 |
|----------------------|--------------------------------------|-----------------------|--|
| 1. 제32조제1항제 1호의 저장시설 | 가. 5만kl 이상의 기름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 |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 B형 또는 C형 | 기름의 양이 5만kl 이상 10만kl 미만인 경우에는 660m, 10만kl 이상 20만kl 미만인 경우에는 840m, 20만kl 이상인 경우에는 1,000m |
| | | 유처리제·유흡착재 또는 유겔화제 | 다음의 산식에 의한 양
$20X+50Y+15Z=U$ |
| | 나. 5만kl 미만 300kl 이상의 기름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 |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 A형 또는 B형 | 기름의 양이 300kl 이상 1천kl 미만인 경우에는 200m, 1천kl 이상 1만kl 미만인 경우에는 320m, 1만kl 이상 5만kl 미만인 경우에는 460m |
| | | 유처리제·유흡착재 또는 유겔화제 | 다음의 산식에 의한 양
$20X+50Y+15Z=U$ |
| 2. 제32조제1항제 2호의 계류시설 | 가. 총톤수 10만톤 이상의 유조선 을 계류하는 시설 |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 B형 또는 C형 | 계류할 수 있는 최대 선박길이의 1.5배의 길이 |
| | | 유처리제·유흡착재 또는 유겔화제 | 다음의 산식에 의한 양
$20X+50Y+15Z=U$ |
| | 나. 총톤수 10만톤 미만 100톤 이상 유조선을 계류하는 시설 |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 A형 또는 B형 | 계류할 수 있는 최대 선박길이의 1.5배의 길이 |
| | | 유처리제·유흡착재 또는 유겔화제 | 다음의 산식에 의한 양
$20X+50Y+15Z=U$ |

비고

1.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유형 | 수면 위 (cm) | 수면 아래 (cm) |
|----|-------------|-------------|
| A형 | 2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40 미만 |
| B형 | 30 이상 60 미만 | 40 이상 90 미만 |
| C형 | 60 이상 | 90 이상 |

2. X, Y, Z, U 및 W는 각각 다음과 같다.

X: 유처리제의 양(kl)

Y: 유흡착재의 양(t)

Z: 유겔화제의 양[액상(kl), 분말(t)]

U:

가.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갖추어 둘 수 있는 기름의 양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값

| 총톤수 | 300이상
1천미만 | 1천이상
5천미만 | 5천이상
1만미만 | 1만이상
5만미만 | 5만이상
10만미만 | 10만이상
20만미만 | 20만이상 |
|-----|---------------|--------------|--------------|--------------|---------------|----------------|-------|
| U | 10 | 15 | 20 | 25 | 30 | 40 | 50 |

나.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계류시설에 계류할 수 있는 최대선박의 총톤
수에 따라 가목의 표에 의하여 정하는 값

W: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계류시설에 계류할 수 있는 최대선박의 총톤수에
따라 가목의 표에 의하여 정하는 값

3. 제32조제1항제1호의 저장시설의 설치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계류시설의 관리자
인 경우에는 이 표의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치기준 중 큰 쪽의 것을 적용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21. 6. 30.>

항만관리청의 보관시설의 자재·약제 비치기준(제33조제2항 관련)

| 설치 항만 \ 자재 비치기준 | 해양유류오염
확산차단장치
(m) | 유흡착재
(kg) |
|--|-------------------------|--------------|
| 최고위험도 항만
(광양, 대산, 울산) | 1,000 | 2,000 |
| 고위험도 항만
(부산, 인천, 군산) | 800 | 1,000 |
| 중위험도 항만
(평택·당진, 포항, 태안, 목포, 고현, 마산, 옥포, 제주, 동해·묵호, 옥계, 보령, 삼천포, 호산, 장항, 여수, 진해, 완도, 통영, 서귀포, 속초, 장승포, 삼척, 하동) | 500 | 500 |
| 저위험도 항만
(경인, 서울, 급유선 입출항 연안항 및 국가어항) | 200 | 200 |
| 비고
1. 최고위험도 항만 및 고위험도 항만에서는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 B형과 C형을 혼합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삭제 <2011.9.29> | | |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17. 7. 28.>

보관시설의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제33조제2항 관련)

1. 보관시설의 시설기준

- 가. 보관된 자재·약제를 비·바람 등으로부터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구조물이어야 하며 그 바닥은 방수시공된 것일 것
- 나. 자재·약제가 변질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환기장치와 쥐에 의한 피해예방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 다. 조명시설 및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라. 자재·약제를 반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반출통로가 확보되어 있을 것
- 마. 자재·약제의 운송을 위한 차량 및 선박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보관시설의 운영기준

- 가. 보관시설마다 최소한 1명 이상의 관리요원이 지정되어 있고 관리요원과 항상 비상연락을 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할 것
- 나. 방제활동을 위한 통신망 확보 등 관할 해역관리청 및 해양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을 것
- 다. 다음 사항이 기록된 보관시설관리규정을 비치하고 있을 것
 - 1) 관리책임자 및 관리요원의 비상연락망
 - 2) 자재·약제의 관리요령 및 사용방법
 - 3) 보관시설의 정기적인 점검사항
 - 4) 자재·약제의 긴급반출·이송요령
 - 5) 그 밖의 비상시의 조치사항

비고

인근 항만의 보관시설에서 해당 항만까지 3시간 이내에 방제 자재·약제를 동원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보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 <신설 2021. 1. 7.>

해양자율방제대의 시설 및 방제자재 기준(제35조의2제1항 관련)

1. 시설 기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모두 갖추는 것

가. 비·바람 등으로부터 방제자재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물

나. 방제자재의 변질 또는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환기장치 및 쥐에 의한 피해예방장치

다. 방제자재 반출에 지장이 없는 반출통로

2. 방제자재 기준

다음 각 목의 방제자재를 모두 갖추거나 필요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보유한 방제자재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가. 오일펜스 40m 이상

나. 유흡착재 30kg 이상

다. 개인보호장구세트 10세트 이상

라. 일회용 작업복 및 장갑 20벌 이상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의3] <신설 2021. 1. 7.>

재해보상의 종류 및 지급기준(제35조의2제4항 관련)

1. 재해보상의 종류

- 가. 요양보상: 해양자율방제대원이 해양오염방제 활동 등에의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어 요양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치료·수술·약제·입원비를 지급한다. 다만, 순경 10호봉 봉급액의 5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장애보상: 해양자율방제대원이 해양오염방제 활동 등에의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어 완치된 후에 신체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등급별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 다. 장제보상: 해양자율방제대원이 해양오염방제 활동 등에의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 라. 유족보상: 해양자율방제대원이 해양오염방제 활동 등에의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2. 재해보상의 지급 기준

| 종류 | | 보상금 결정 기준 | 비고 |
|-----------------------|-----|------------------|---|
| 요양보상 | | 순경 10호봉 봉급액 5년분 | |
| 장제보상 | | 순경 10호봉 봉급액 3월분 | |
| 유족보상 | | 순경 10호봉 봉급액 10년분 | |
| 장애
등급별
장애
보상 | 제1급 | 유족보상금의 100/100 | ※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의사상자의 부상 범위 및 등급에 따른다. |
| | 제2급 | 유족보상금의 88/100 | |
| | 제3급 | 유족보상금의 76/100 | |
| | 제4급 | 유족보상금의 64/100 | |
| | 제5급 | 유족보상금의 52/100 | |
| | 제6급 | 유족보상금의 40/100 | |
| | 제7급 | 유족보상금의 20/100 | |
| | 제8급 | 유족보상금의 10/100 | |
| | 제9급 | 유족보상금의 5/100 | |

비고

제1호다목 및 라목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대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 2023. 12. 28.>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기준 (제36조제3항 관련)

1. 삭제 <2020. 12. 4.>

2. 해양오염방제업

| 항목 | | 기준 |
|----|--------------|--|
| 선박 | 소유여부 | 소유(다만, 유조부선은 임차한 경우 이를 갖춘 것으로 봄) |
| | 구분 | 가. 총톤수 20톤 이상의 유조선 1척 이상 또는 총톤수 100톤 이상의 방제선 1척 이상
나. 기름을 저장·운송할 수 있는 총톤수 50톤 이상의 유조부선 또는 유조선 1척 이상
다. 총톤수 20톤 이상의 방제작업선 1척 이상 |
| | | |
| 장비 | 유회수기 | 시간당 회수용량 합계 20m ³ 이상 |
| | 고압세척기 | 동작압력 150kg/cm ² 이상으로 1대 이상 |
| | 예열기 | 5kW 이상으로 2대 이상 |
| | 점도유이송펌프 | 15kW 이상으로 1대 이상 |
| 자재 |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 | B형 이상으로 300m 이상 |
| | 유흡착제 | 200kg 이상 |

비고

1. 해양오염방제업과 유창청소업을 겸업하는 경우 시설·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해양오염방제업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폐유를 수집·운반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다.
- 2의2.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위 표의 장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장비로서 로봇이나 복합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로봇이나 복합장비가 위 표의 장비별 기준 중 하나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충족한 기준에 해당하는 장비 항목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유조선이란 회수한 기름을 산적하여 운송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이 설치된 선박을 말한다.
4. 방제선이란 유회수기 및 기름이송펌프 등 방제장비와 회수한 기름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유출된 기름을 회수하거나 저장할 수 있는 선박을 말한다.
5. 유조부선이란 회수한 기름을 산적하여 운송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해하는 선박을 말한다.

6. 방제작업선이란 방제작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3. 유창청소업

| 항목 | | 기준 |
|----|-------------|--|
| 선박 | 소유여부 | 소유(다만, 유조부선은 임차한 경우 이를 갖춘 것으로 봄) |
| | 구분 | 가. 총톤수 10톤 이상의 유조선 1척 이상
나. 기름을 저장·운송할 수 있는 총톤수 50톤 이상의 유조부선 또는 유조선 1척 이상 |
| 장비 | 가스검지기 | 1대 이상 |
| | 이동식 조명장치 | 폭발방지형으로 3대 이상 |
| | 송양기 | 양력 40kg 이상으로 1대 이상 |
| | 공기압축기 | 1대 이상 |
| | 에어펌프 | 1대 이상 |
| | 스팀 또는 에어터빈팬 | 2대 이상 |

비고

1. 해양오염방제업과 유창청소업을 겸업하는 경우 시설·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유창청소업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폐유를 수집·운반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다.
3. 유조선이란 수거한 기름을 산적하여 운송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이 설치된 선박을 말한다.
4. 유조부선이란 수거한 기름을 산적하여 운송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해하는 선박을 말한다.

4. 삭제 <2020. 12. 4.>

5. 삭제 <2020. 12. 4.>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개정 2023. 4. 25.>

해양환경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44조 관련)**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처분 기준 중 경고(또는 시정명령)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고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 나.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한다.
-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바.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75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
|------------------------------|---------------|--------|----|----|----|
| | | 1차 | 2차 | 3차 | 4차 |
| 1) 법 제7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 법 제75조 제1항제1호 | 등록취소 | | | |

| | | | | | |
|--|---------------|------|----------|----------|----------|
| 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법 제71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 법 제75조 제1항제2호 | 등록취소 | | | |
| 3)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법 제75조 제1항제3호 | 등록취소 | | | |
|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75조 제1항제4호 | 등록취소 | | | |
| 5)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1항제5호 | | | | |
| 가) 고의로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한 경우 | | 등록취소 | | | |
| 나) 과실로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게 한 경우 | | 경고 | 경고 | 등록취소 | |
| 다) 오염물질의 처리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한 경우 |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등록취소 |
| 라) 기술요원이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 | 경고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 마) 선박이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바) 설비 및 장비가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사) 설비 및 장비가 등록요건에 맞도록 유지되지 않은 경우 | | 경고 | 경고 | 경고 | 영업정지 6월 |
| 6) 법 제72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75조 제1항제6호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등록취소 |

| | | | | | |
|--|---------------|----|-------------|-------------|-------------|
| 7) 법 제73조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 | 법 제75조 제1항제7호 | 경고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 8)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 법 제75조 제1항제8호 | 경고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개정 2026. 7. 1.>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47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을 수 없다.
- 나. 가목의 경우 각각의 처분기준 중 경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고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법 제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
|---|---------------|--------|----|----|----|
| | | 1차 | 2차 | 3차 | 4차 |
|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82조 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 |
| 나. 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82조 제1항제2호 | 지정취소 | | | |
| 다. 법 제8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 제81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 법 제82조 제1항제3호 | 지정취소 | | | |

| | | | | | |
|--|---------------|------|-------------|-------------|------|
|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이사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라.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법 제82조 제1항제4호 | 지정취소 | | | |
| 마. 다른 사람에게 지정기관의 권한을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 법 제82조 제1항제5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양오염영향조사를 부실하게 행한 경우 | 법 제82조 제1항제6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의2] <개정 2021. 2. 19.>

위해도 평가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평가점수(제47조의2제1항 관련)

1. 평가방법

위해도 평가의 점수는 각 평가항목별 점수를 모두 더한 값으로 한다.

2.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가. 선박 종류: 배점 5점

| 선박 종류 | 유조선, 위험물운반선 | 일반화물선 | 예인선 등 작업선, 어선 | 부선 등 기타 | 미상 |
|-------|-------------|-------|---------------|---------|----|
| 평가점수 | 5 | 4 | 3 | 2 | 1 |

비고: 위 표에서 유조선은 유조부선을 포함하고, 위험물운반선은 가스운반선, 케미칼탱커, 방사성 물질 운반선을 포함한다.

나. 선박 규모: 배점 5점

| 총톤수 | 1만톤 이상 | 5천톤 이상
1만톤 미만 | 3천톤 이상
5천톤 미만 | 1천톤 이상
3천톤 미만 | 5백톤 이상
1천톤 미만 | 1백톤 이상
5백톤 미만 | 1백톤 미만 |
|------|--------|------------------|------------------|------------------|------------------|------------------|--------|
| 평가점수 | 5 | 4.5 | 4 | 3 | 2 | 1.5 | 1 |

다. 잔존 위험물: 배점 40점

| 위험물 \ 잔존량 | | 1,000kl 이상 | 500kl 이상
1,000kl 미만 | 100kl 이상
500kl 미만 | 50kl 이상
100kl 미만 | 10kl 이상
50kl 미만 | 10kl 미만 | 없음 |
|-----------|-----------------------------|------------|------------------------|----------------------|---------------------|--------------------|---------|----|
| 기
를 | API°24이하
또는 중유(HFO) | 40 | 35 | 20 | 15 | 10 | 5 | 0 |
| | API°24초과 34이하
또는 중유(HFO) | 32 | 28 | 16 | 12 | 8 | 4 | 0 |
| | 중간등급 중유(IFO) 법제처 | | | | 124 | | | |
| | API°34초과 44미만 | | | | | | | |

비고

- 1) 위 표에서 "API"란 미국석유회(API, American Petroleum Institute)에서 정한 원유의 비중을 말한다.
- 2) 위 표에서 유해액체물질의 경우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의 분류에 따른다.

라. 여유 수심: 배점 5점

| 여유 수심 | 15m 미만 | 15m 이상
20m 미만 | 20m 이상
25m 미만 | 25m 이상
30m 미만 | 30m 이상 |
|-------|--------|------------------|------------------|------------------|--------|
| 평가점수 | 5 | 4 | 3 | 2 | 1 |

비고: 위 표에서 "여유 수심"이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수준면으로부터 침몰선박의 최상부 구조물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마. 해역환경 민감도: 배점 15점

| 해안선 또는 민
감해역
으로부터 거리 | 1해리 미만 | 1해리 이상
5해리 미만 | 5해리 이상
12해리 미만 | 12해리 이상
25해리 미만 | 25해리 이상 |
|----------------------------|--------|------------------|-------------------|--------------------|---------|
| 평가점수 | 15 | 10 | 7 | 4 | 1 |

비고

- 1) 위 표에서 "해안선"이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을 말한다.
- 2) 위 표에서 "민감해역"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을 말한다.
 - 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생태계 관리구역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항만·항행구역
 - 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 다)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에 따른 보호수면
 - 라) 「습지보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습지

| | | | | |
|------|--------|---------------|--------------|-------|
| 선령 | 20년 이상 | 10년 이상 20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5년 미만 |
| 평가점수 | 4 | 3 | 2 | 1 |

2) 사고 후 경과기간

| | | | | | | |
|------|--------|-------------------|-------------------|-------------------|------------------|-------|
| 경과기간 | 25년 이상 | 20년 이상~
25년 미만 | 15년 이상~
20년 미만 | 10년 이상~
1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5년 미만 |
| 평가점수 | 6 | 5 | 4 | 3 | 2 | 1 |

사. 해상 교통환경: 10점

| | | | | | |
|------|-----------|---------|-----|-------|----|
| 교통환경 | 항만 입출항 항로 | 항만경계 부근 | 정박지 | 일반 항로 | 기타 |
| 평가점수 | 10 | 8 | 6 | 4 | 2 |

아. 선체 위험성: 5점

| | | |
|-----------------|---------------------------------------|--------------------------|
| 선체위험성
(사고유형) | 외력에 의해 선체 손상 침몰
(화재, 폭발, 충돌, 좌초 등) | 선체 손상없이 침몰
(침수, 전복 등) |
| 평가점수 | 5 | 1 |

자. 조류: 5점

| | | | |
|------|----------|---------------------|----------|
| 유속 | 2knot 이상 | 1knot 이상 ~ 2knot 미만 | 1knot 미만 |
| 평가점수 | 5 | 3 | 1 |

비고: 위 표에서 "유속"이란 국립해양조사원 등에서 관측한 해양관측 결과 중 사고해역 인근의 가장 빠른 유속을 말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삭제 <2025. 1. 14.>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삭제 <2025. 1. 14.>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삭제 <2025. 1. 14.>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0] 삭제 <2025. 1. 14.>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삭제 <2025. 1. 14.>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삭제 <2024. 6. 28.>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3] 삭제 <2024. 6. 28.>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4] <개정 2024. 6. 28.>

형식승인(수입신고)표(제68조 관련)

| | |
|---------|--------|
| 제작회사: | 기기형식: |
| 형식승인번호: | 형식승인일: |
| 기기고유번호: | 수입신고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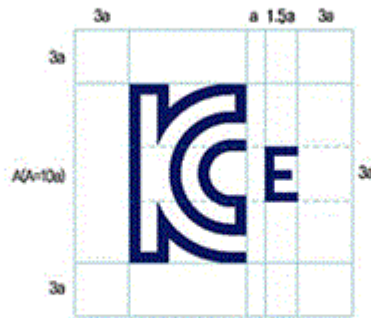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임을 증명합니다.

비고

1. 표지의 재질은 알미늄판 등으로 하며, 크기는 가로 90mm × 세로 40mm로 한다.
2. 글자의 표기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인쇄 또는 각인으로 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5] <개정 2024. 6. 28.>

자재·약제에 대한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제70조제3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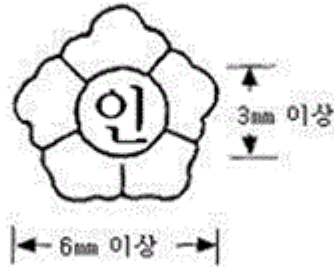


비고

위의 국가통합인증마크 외에 검정일자와 검정기관의 약호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5의2] <신설 2011.9.29>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의 성능인증 표시(제72조의6제2항 관련)



비고

위의 인증표시 외에 성능시험일자와 성능시험기관의 약호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6] <개정 2024. 6. 28.>

형식승인 취소 및 업무정지처분기준(제72조제1항 관련)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
|--|----------------|----------|----------|------|----|
| | | 1차 | 2차 | 3차 | 4차 |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얻은 경우 | 법 제110조 제9항제1호 | 형식승인 취소 | | | |
| 2. 검정을 받지 않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10조 제9항제2호 | 형식승인 취소 | | | |
| 3. 기준에 미달하는 자재·약제를 판매한 경우 | 법 제110조 제9항제3호 | 형식승인 취소 | | | |
|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 법 제110조 제9항제4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7]

선박처리장의 시설·장비기준(제73조 제3항 관련)

1. 총톤수 5톤 이상의 작업선 1척
2. 배수펌프 2대
3. 절단기 10대
4. 50톤급 이상의 크레인 1대
5. 33㎡ 넓이의 사무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8] 삭제 <2024. 6. 28.>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9] <개정 2026. 7. 1.>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검정 업무 대행자 지정기준(제74조제1항 관련)

1. 기술능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춘 사람 4명 이상을 둘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화학·화공·자원·산업·환경·고분자·생물·미생물·해양학 또는 해양환경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의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에서 화학·화공·자원·산업·환경·고분자·생물·미생물·해양학 또는 해양환경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의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술사 또는 해양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기사, 화학분석기사, 산업안전기사, 수질환경기사, 대기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해양환경기사 또는 해양공학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의 업무에 3개월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또는 해양조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의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시험설비 및 장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시험·검정할 수 있는 장비와 실험실이 있을 것

가. 유처리제

- 1) 인화점
- 2) 동점도(운동점성계수)
- 3) 유화율
- 4) 생물에 대한 영향
- 5) 밀도
- 6) 유동점
- 7) 색

나. 유흡착제

- 1) 온도
- 2) 흡유량
- 3) 흡수량
- 4) 진탕(振盪)
- 5) 강도
- 6) 인장(引張)

다. 유겔화제

- 1) 인화점
- 2) 동점도(운동점성계수)
- 3) 겔화율
- 4) 포집율
- 5) 유겔화제의 회수성

6) 생물에 대한 영향

7) 겔화유의 함수율

라.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

1) 외관

2) 치수

3) 재질

4) 접속부

5) 부유도(浮游度)

6) 인장강도

7) 기실(氣室)의 누설

8) 내유성(內油性)

9) 내후성(內候性)

마. 생물정화제제

1) 생물에 대한 영향

2) 유류분해 성능

3) 영양염 농도

4) 단백질 농도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업무대행자의 지정취소 처분기준(제75조제1항 관련)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
|--|----------------|--------|------|----|----|
| | | 1차 | 2차 | 3차 | 4차 |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13조 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 |
| 2. 법 제112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 법 제113조 제1항제2호 | | | | |
| 가. 인력이 부족한 경우 | | 경고 | 지정취소 | | |
| 나. 설비 및 장비가 부족한 경우 | | 경고 | 지정취소 | | |
| 다. 인력 및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 | 지정취소 | | | |
| 3.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법 제113조 제1항제3호 | 경고 | 지정취소 | | |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1] 삭제 <2013.6.19>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2] <개정 2026. 7. 1.>

수수료(제83조제1항 관련)

1.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변경검인: 3,000원
2. 삭제 <2012.6.27>
3. 삭제 <2024. 6. 28.>
4.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및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검정

| 자재·약제의
종류 | 성능시험 | | 검정 | |
|------------------|-----------|------|-------|--------|
| | 수수료 | 단위 | 수수료 | 단위 |
| 해양유류오염확산
차단장치 | 440,100 | 원/1회 | 2,600 | 원/20m |
| 유처리제 | 3,775,800 | 원/1회 | 2,600 | 원/18 ℓ |
| 유흡착제 | 783,400 | 원/1회 | 2,600 | 원/10kg |
| 유겔화제 | 2,272,000 | 원/1회 | 2,600 | 원/10kg |
| 생물정화제제 | 3,862,100 | 원/1회 | 2,600 | 원/18 ℓ |

비고

1. 현장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검사(현장까지의 이동 및 복귀에 필요한 시간은 제외한다)에 드는 출장비를 수수료에 가산한다. 다만, 단일항목 기준 1일 이하의 출장검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일당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에 따른 국내 여비 지급표의 숙박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출장검사에 필요한 최소기술인력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1회의 출장에 둘 이상의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시간을 고려하여 분할 산정하여야 한다.
3. 연륙교(連陸橋: 육지와 섬을 이어주는 다리)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에 출장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에 선박운임을 별도로 가산할 수 있다.
4.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 수수료는 상기 자재·약제의 종류 중 가장 유사한 방법으로 수행하는 성능시험 및 검정업무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3] <개정 2020. 12. 4.>

위임업무 자료제출 (제84조제1항 관련)

| 업무내용 | 보고횟수 | 보고기일 | 보고자 |
|-----------------------------------|------|--------------------|----------------------|
| 1. 삭제 <2011.9.29> | | | |
| 2. 해양환경개선부과금 부과실적, 징수실적 및 채납처분 현황 | 연 2회 |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 해양경찰청장 |
| 3. 해양시설 신고 현황 | 연 2회 |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
| 4. 삭제 <2011.9.29> | | | |
| 5. 삭제 <2020. 12. 4.> | | | |
| 6. 삭제 <2020. 12. 4.> | | | |
| 7. 삭제 <2020. 12. 4.> | | | |
| 8. 해역이용협의 실적 | 연 2회 |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 지방해양수산청장 |
| 9. 해역이용영향평가 실적 | 연 2회 |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 지방해양수산청장 |
| 10. 평가대행자의 등록현황 | 연 1회 | 다음 해 2월 말
까지 | 지방해양수산청장 |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6. 28.>

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 인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
기간 | 90일 |
| 신청인 | 상호(사업장 명칭) 또는 법인명 | | 법인등록번호 | |
| | 대표자(성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 법인 주소 | | 법인 전화번호 | |
| | 사업장 소재지 | | 사업장 전화번호 | |
| 신청
내용 | 신청분야 | | | |

「해양환경관리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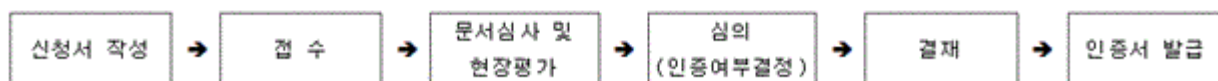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
|------|-----------------|---|
| 첨부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1. 측정·분석 장비 및 설비의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2. 측정·분석 인력의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3. 측정·분석 실험실의 구조 및 환경 조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설비, 인력 및 실험실이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 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정도관리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3.24>

제 호

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 인증서

1. 기관명:
2. 대표자:
3. 법인등록번호:
4. 법인 주소:
5. 사업장 소재지:
6. 유효기간:
7. 인증분야 및 범위:

「해양환경관리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른 측정·분석능력 인증기준에 부합하여 위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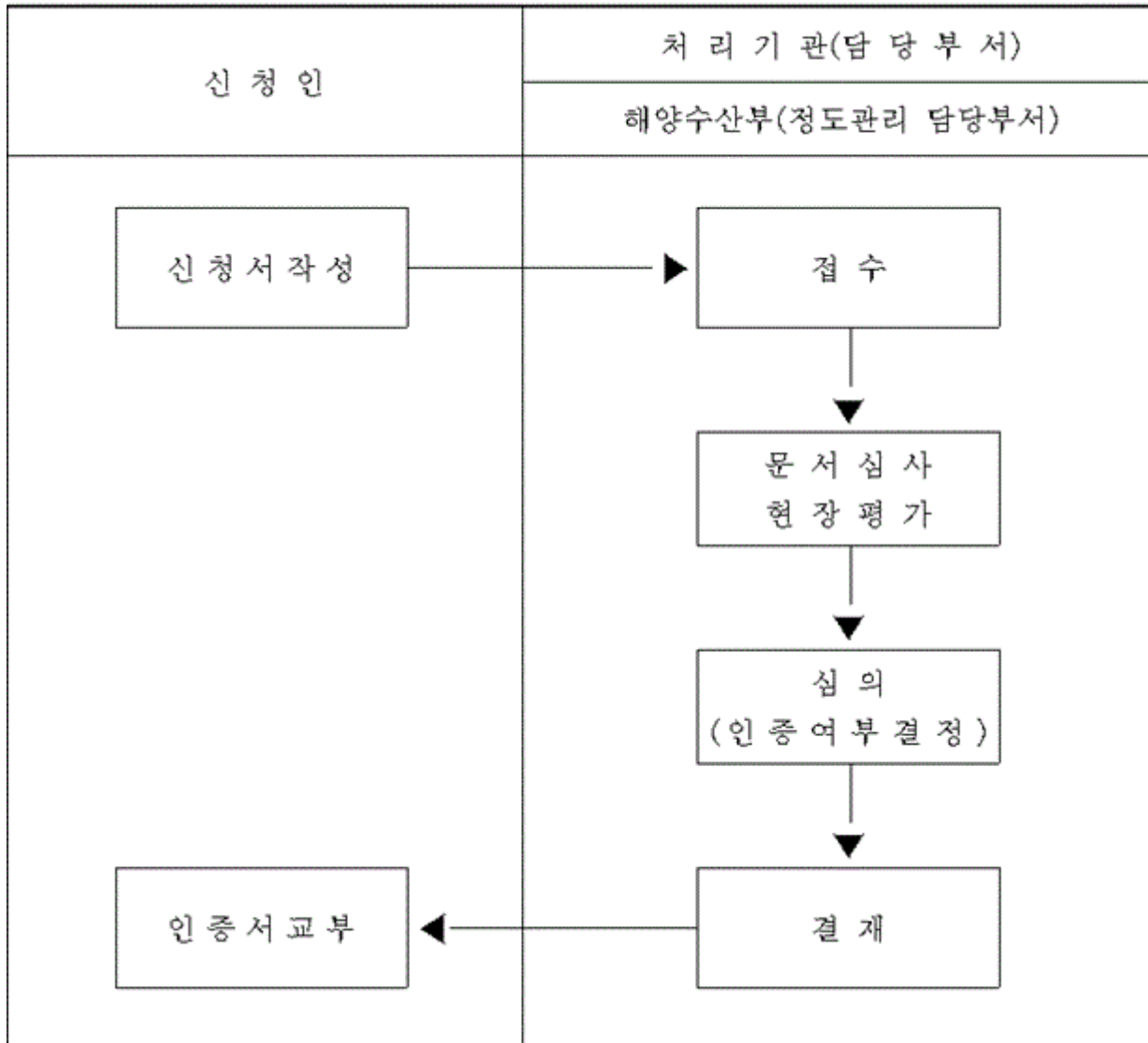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2. 26.>

| | | | | | | | |
|-------------------|--------------------|--------|--|---|--|--|----|
| 회계연도 | 납부고지서 원부(기금출납명령관용) | | | | | 납부기한 | |
| 발행번호 | | | | | | 고지일자 | |
| ①
납입자 | 성명·상호 | | | | | | |
| | 납입자번호 | ② 국고계좌 | | | | | |
| | 주소 | | | | | | |
| ③ 회계 | | 소관 | | 관 | | 항 | 목 |
| ④ 과목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 | | | | 년 분기분 | |
| ⑤ 산출근거 | | | | | | | |
| ⑥ 납기 전 금액 | 원 | | | | |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알립니다.
년 월 일 | |
| ⑦ 납기 후 금액 | 원 | | | | | | |
| 기금출납명령관: 지방해양수산청장 | | | | | | | 직인 |

| | | | | | | | |
|----------------------------|---------------------|--------|--|---|--|--|-----|
| 회계연도 | 납부 영수필통지서(기금출납명령관용) | | | | | 납부기한 | |
| 발행번호 | | | | | | 고지일자 | |
| ①
납입자 | 성명·상호 | | | | | | |
| | 납입자번호 | ② 국고계좌 | | | | | |
| | 주소 | | | | | | |
| ③ 회계 | | 소관 | | 관 | | 항 | 목 |
| ④ 과목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 | | | | 년 분기분 | |
| ⑤ 산출근거 | | | | | | | |
| ⑥ 납기 전 금액 | 원 | | | | |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알립니다.
년 월 일 | |
| ⑦ 납기 후 금액 | 원 | | | | | | |
| ()은행()지점 ()우체국 ()출납공무원 | | | | | | | 영수인 |

| | | | | | | | |
|-----------------------|------------------|--------|--|---|--|---|----|
| 회계연도 | 납부 고지서겸영수증(납입자용) | | | | | 납부기한 | |
| 발행번호 | | | | | | 고지일자 | |
| ①
납입자 | 성명·상호 | | | | | | |
| | 납입자번호 | ② 국고계좌 | | | | | |
| | 주소 | | | | | | |
| ③ 회계 | | 소관 | | 관 | | 항 | 목 |
| ④ 과목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 | | | | 년 분기분 | |
| ⑤ 산출근거 | | | | | | | |
| ⑥ 납기 전 금액 | 원 | | | | | 위 금액을 납입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
법」 제36조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
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
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습니다. | |
| ⑦ 납기 후 금액 | 원 | | | | | | |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 | | | | | | |
| ()은행()지점 ()우체국 영수인 | | | | | | | 직인 |

| | | | | | | | |
|----------------------------|--------------|--------|--|---|--|-------|-----|
| 회계연도 | 납부서(수납은행보관용) | | | | | 납부기한 | |
| 발행번호 | | | | | | 고지일자 | |
| ①
납입자 | 성명·상호 | | | | | | |
| | 납입자번호 | ② 국고계좌 | | | | | |
| | 주소 | | | | | | |
| ③ 회계 | | 소관 | | 관 | | 항 | 목 |
| ④ 과목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 | | | | 년 분기분 | |
| ⑤ 산출근거 | | | | | | | |
| ⑥ 납기 전 금액 | 원 | | | | | | |
| ⑦ 납기 후 금액 | 원 | | | | | | |
| ()은행()지점 ()우체국 ()출납공무원 | | | | | | | 영수인 |

297mm × 210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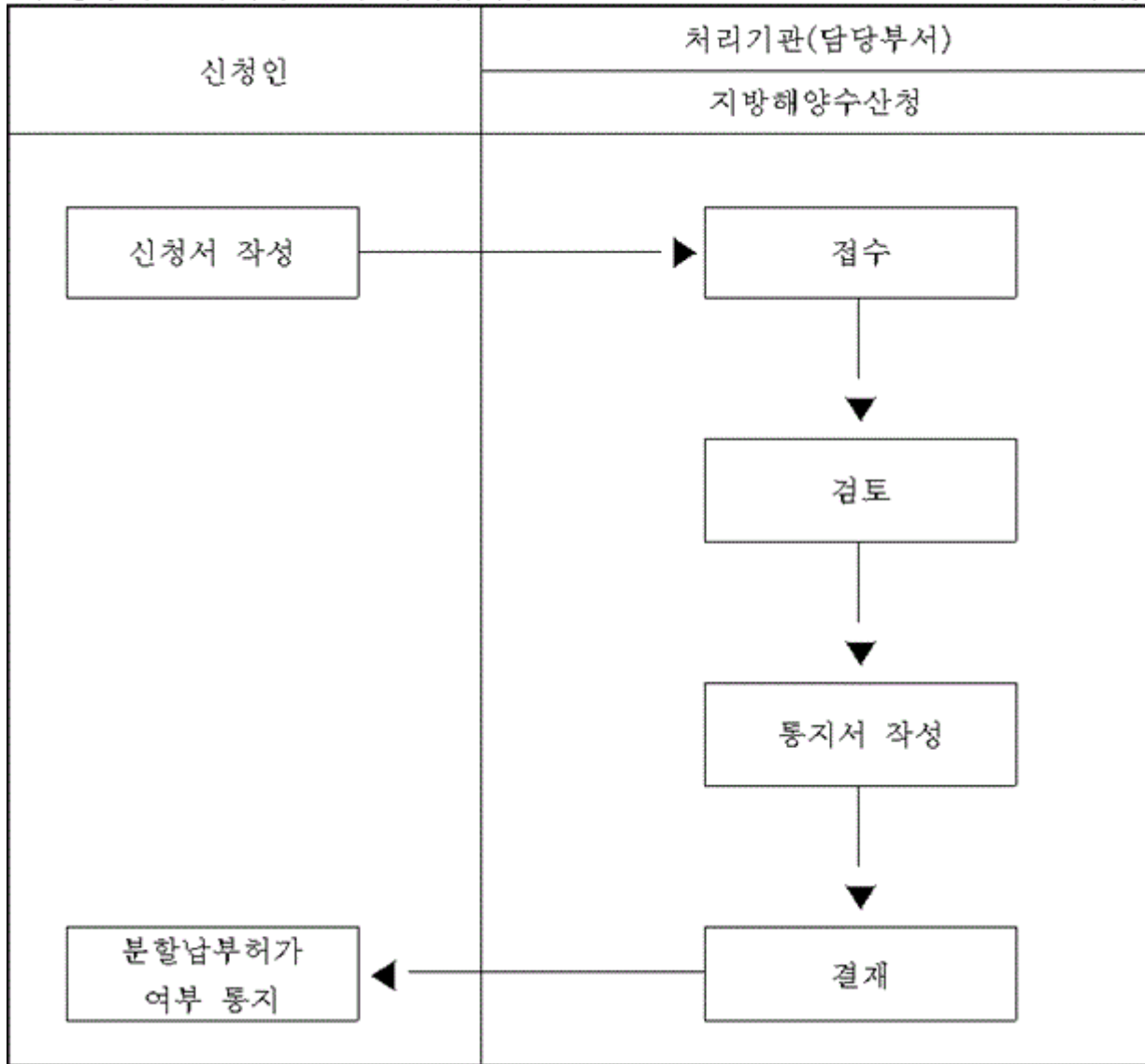
(앞쪽)

| | | | | | | | | | |
|--|------------|-----------------|--|--------|--|--------|--|--------|-----|
| 해양환경개선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 | | | | | | 처리기간 | | | |
| 즉시 | | | | | | | | | |
| 신
청
인 | ① 상호 | | | | | | | | |
| | ② 납부의무자 성명 | | | ③ 생년월일 | | | | | |
| | ④ 주소 | | | | | | | | |
| 당초부과내역 | | | | | | | | | |
| ⑤ 납부고지서
수령일 | | ⑥ 납부고지서
발행번호 | | ⑦ 고지일자 | | ⑧ 부과금액 | | ⑨ 납부기한 | |
| | | | | | | | | | |
| 분할납부신청내역 | | | | | | | | | |
| ⑩ 분할납부
신청금액 | | 합계 | | 1차 | | 2차 | | 3차 | |
| | | | | | | | | | |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양환경 개선부담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 | | | | | | | | |
|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 신청인 (서명 또는 인) </div> <div style="margin-top: 20px;">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div> | | | | | | | | | |
| 구비서류: 없음 | | | | | | | | | 수수료 |
| | | | | | | | | | 없음 |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2. 26.>

| | | | |
|-------|-----|------|------|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 | 팩스/ |
| 과명/ | 과장/ | 담당/ | 담당자/ |
| | | 이메일/ | |

| 해양환경개선부담금분할납부통지서 | | | | |
|---|-----------------|----------------|--------------------|----------------------|
| 신청인 | ① 상호 | | | |
| | ② 납부의무자
성명 | | ③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 ④ 주소 | | | |
| ⑤ 부과기간 | ⑥ 납부고지서
발행번호 | ⑦ 부과금액 | ⑧ 분할납부금액 | ⑨ 차감부과금액 |
| | | | | |
| 분할납부신청내역 | | | | |
| ⑩ 분할 횟수 | ⑪ 납부기한 | ⑫ 분할납부금액
원금 | ⑬ 이자금액 | ⑭ 납부하여야 할
금액(⑫+⑬) |
| 1차 | | | | |
| 2차 | | | | |
| 3차 | | | | |
| 합계 | | | | |
| <p>「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양환경 개선부담금의 분할납부 내용을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지방해양수산청장 </p> | | | | |

안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분할 납부허가를 취소하고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1. 분할납부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채납으로 채납처분을 받은 때
3. 강제집행을 받거나 경매가 개시된 때
4. 법인이 해산한 때
5.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12. 26.>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조정부과·환급 통지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조정부과(또는 환급)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조정부과(또는 환급) 내역

- 부담금:
- 조정부과(또는 환급) 금액:
- 조정부과(또는 환급) 결정일:
- 수납(또는 환급)은행 및 계좌번호:
- 조정부과(또는 환급) 사유:
- 납부고지서 발행번호: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

발 신 명 의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1.8.>

(앞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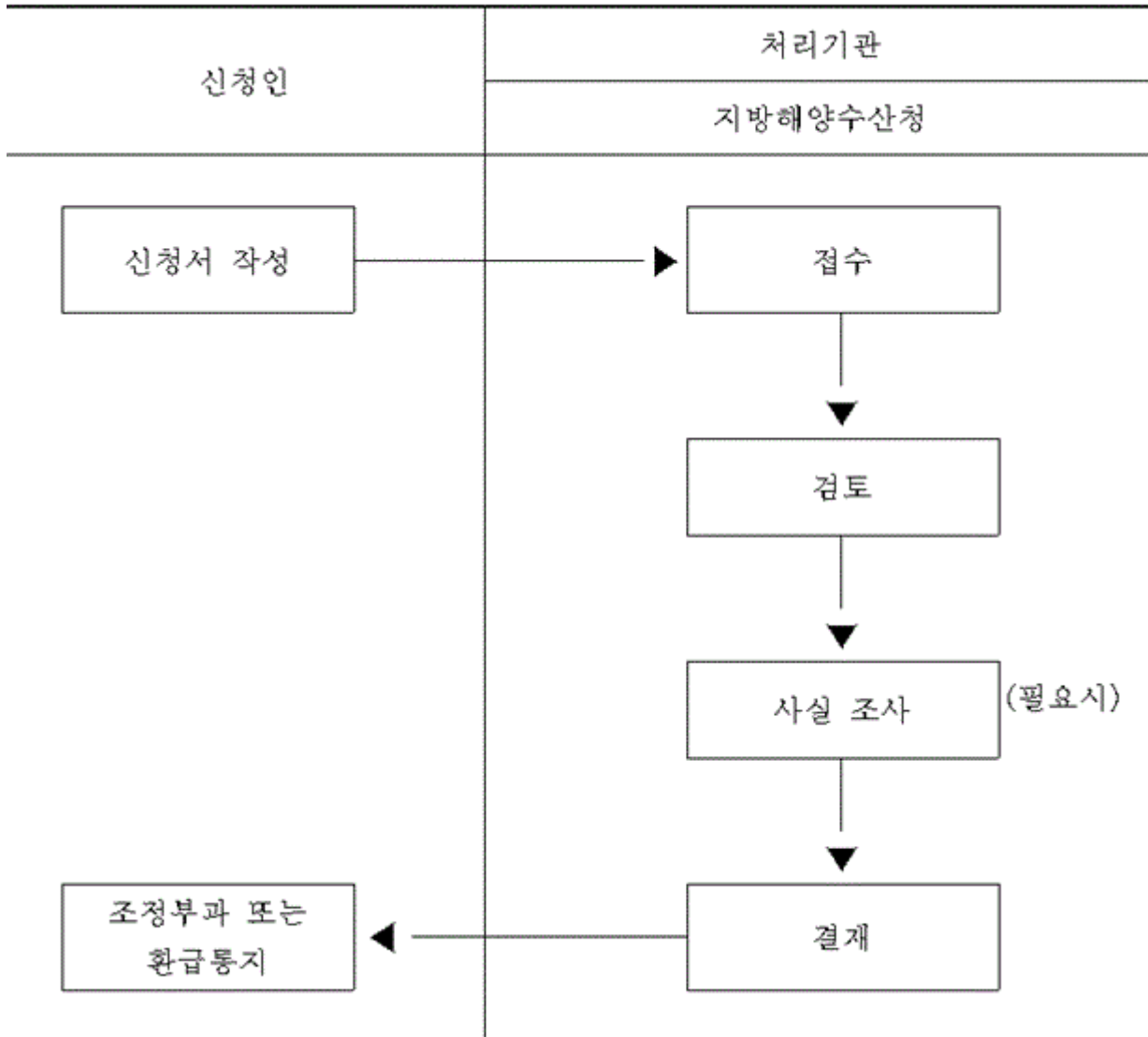
| | | | | | | |
|---|------------|-----------------|--------|--------|--------|-----------------|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서 | | | | | | 처리
기간
30일 |
| 신
청
인 | ① 상호 | | | | | |
| | ② 납부의무자 성명 | | ③ 생년월일 | | | |
| | ④ 주소 | | | | | |
| 당초부과내역 | | | | | | |
| ⑤ 납부고지서
수령일 | | ⑥ 납부고지서
발행번호 | | ⑦ 고지일자 | ⑧ 부과금액 | ⑨ 납부기한 |
| | | | | | | |
| ⑩ 조정신청 사유 | | | | | | |
| <p>「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p> | | | | | | |
| 구비서류: 조정신청 입증서류 1부 | | | | | | 수수료

없음 |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1.8.>

| | | | | |
|--|---|-----------|-----|----|
| 관리번호 | | 독촉장 | | |
| ① 성명 | | ② 상호 | | |
| ③ 사업자등록번호 | | ④ 납부기한 | | |
| ⑤ 주소(사업장) | | | | |
| ⑦
체
납
액 | 계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 가산금 | 비고 |
| | | | | |
| <p>귀하가 납부하여야 할 해양환경 개선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이 독촉장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지방해양수산청장 인</p> | | | | |
| <p>1. 위 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p> <p>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체납액을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p> <p>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지방해양수산청 담당자 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p> | | | | |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20. 12. 4.>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2020. 12. 4.>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2011.9.29>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4. 6. 28.>

해양시설

[]최초
[]변경

신고서

(앞쪽)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최초)7일
(변경)5일 |
| 신고인 | 상호(사업장 명칭) | 성명(대표자) |
|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 |
| 신고내용 | 해양시설의 명칭 | |
| | 해양시설의 설치 장소 | |
| | 해양시설의 용도 | |
| | 변경 내용(변경신고의 경우만 작성합니다) | |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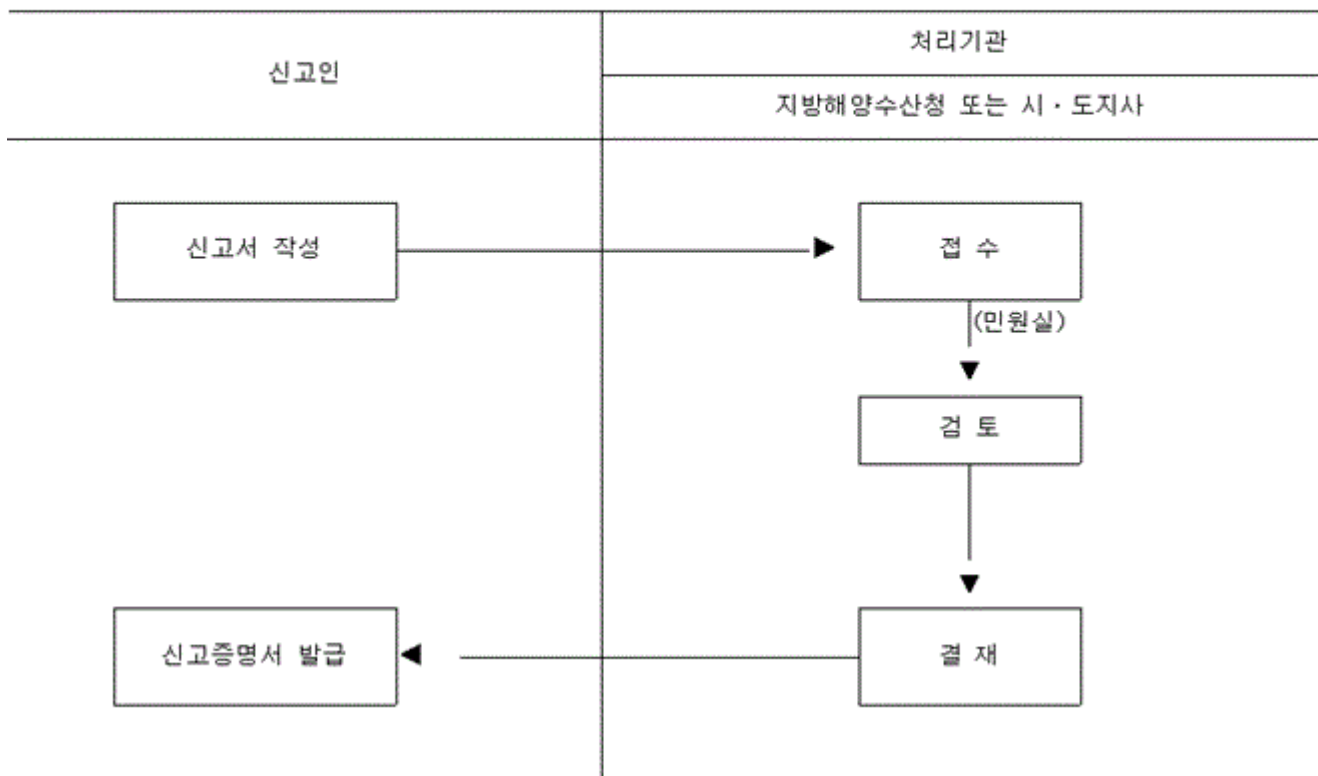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귀하

| | | |
|------|------|--|
| 첨부서류 | 최초신고 | 1. 해양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1 지형도) 1부,
2. 「해양환경관리법」 제32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확인서 사본 1부(같은 법 시행
규칙 별표 1 제1호의 시설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3. 「해양환경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사본 1부(같은 법 시행규칙 제19
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
| | 변경신고 | 1. 해양시설 신고증명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210mm×297mm(백상지 80g/m²)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13호서식]

| 해양시설 신고대장 | | | |
|-------------------|------|--------|----------|
| ① 신고 번호 | | | ② 신고 연월일 |
| 신고자 | ③ 성명 | | ④ 생년월일 |
| | ⑤ 주소 | | |
| ⑥ 상호명칭 | | ⑦ 소재지 | |
| ⑧ 설치위치 | | | |
| ⑨ 해양시설의 용도 | | | |
| ⑩ 해양시설의 종류 | | | |
| 해양오염방제자재의 종류 및 수량 | | | |
| ⑪ 종류 | ⑫ 수량 | ⑬ 비치장소 | |
| | | | |
| 신고변경사항 | | | |
| 년 월 일 | 변경사유 | 기록자인 | |
| | | | |
| | | | |
| | | | |

210mm × 297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5.1.8.>

(앞쪽)

| | | | |
|--|--|--------|--|
| 제 호 | | | |
| 해양시설 (변경)신고증명서 | | | |
| ① 성명 | | ② 생년월일 | |
| ③ 주소 | | | |
| 신고 사항 | | | |
| ④ 사업소 소재지 | | | |
| ⑤ 사업소 명칭 또는 상호 | | | |
| ⑥ 해양시설 용도 | | | |
| ⑦ 해양시설 종류 | | | |
| <p>「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양시설의 (변경)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인</p> | | | |

210mm × 297mm(신문용지 54g/m²)

(뒤쪽)

해양시설변경사항

| 일자 | 내용 | 확인 |
|----|----|----|
| | | |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1. 1.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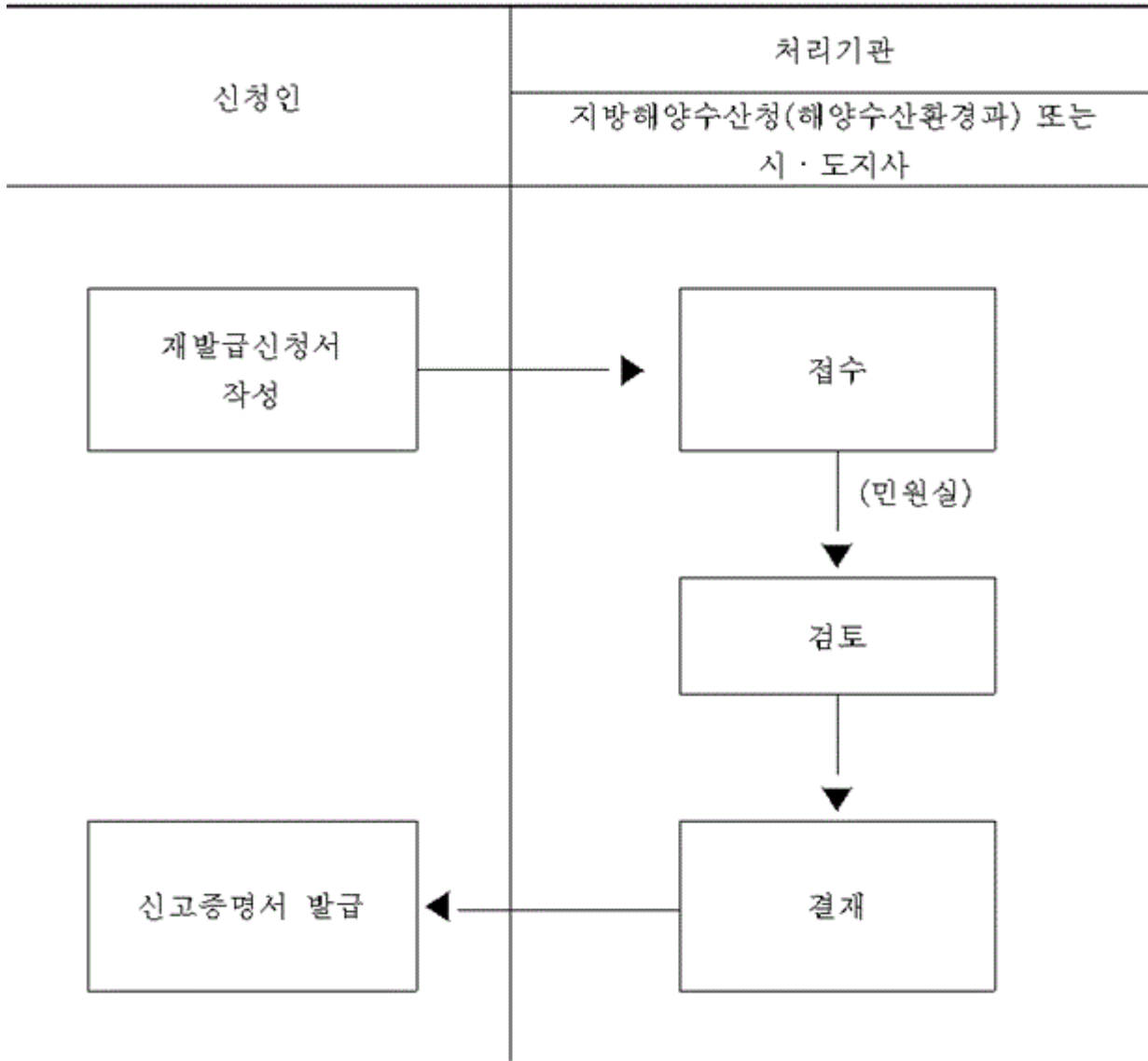
(앞쪽)

| | | |
|---|----------|--------|
| 해양시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 | 처리기간 |
| | | 3일 |
| ① 해양시설 신고증 번호 | | |
| ② 해양시설의 종류 | | |
| ③ 해양시설 용도 | | |
| ④ 사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⑤ 사업소 명칭 또는 상호 | | |
| ⑥ 신청 사유 | | |
| <p>「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6항에 따라 해양
시설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귀하</p> | | |
| 구비서류 | | 수수료 |
| 1. 해양시설 신고증명서 분실사유서(잃어버린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2. 해양시설 신고증명서(헛어서 못쓰게 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 | 1,000원 |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1. 1. 7.>

| | | |
|---|----------|------|
| 해양시설 폐업신고서 | | 처리기간 |
| | | 3일 |
| ① 해양시설 신고증 번호 | | |
| ② 해양시설 종류 | | |
| ③ 해양시설 용도 | | |
| ④ 사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⑤ 사업소 명칭 또는 상호 | | |
| ⑥ 폐업 사유 | | |
| <p>「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7항에 따라 해양시설 폐업 신고를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귀하</p> | | |
| 구비서류: 해양시설 신고증명서 원본 | | 수수료 |
| | | 없음 |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제1쪽)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

1. 해양시설의 명칭:

2. 해양시설의 위치:

3. 해양시설의 형식:

4. 기간: 부터 까지

210mm × 297mm[인쇄용지(특) 100g/m²]

(제3쪽)

비고: 다음 표에 적힌 작업을 할 경우에는 그 일자와 해당 작업의 내용을 표시하는 부호 및 번호를 적고 필요한 상세사항을 작업기록 및 작업책임자 서명란에 기입할 것.

기록하여야 할 작업의 내용과 그 부호 및 번호

| 부
호 | 번
호 | 작업의 내용 |
|--------|--------|---|
| (A) | | 선박으로부터의 기름(유해액체물질)의 하역 |
| | 1 | 하역을 시작한 시간 |
| | 2 | 기름(유해액체물질)을 하역한 선박의 선명, 선박번호, 총톤수 및 국적 |
| | 4 | 하역한 기름(유해액체물질)의 종류 및 총량(세제곱미터에 의한다)
하역을 마친 시간 |
| (B) | | 선박에의 기름(유해액체물질)의 선적 |
| | 1 | 선적을 시작한 시간 |
| | 3 | 기름(유해액체물질)을 선적한 선박의 선명, 선박번호, 총톤수 및 국적 |
| | 4 | 선적한 기름(유해액체물질)의 종류 및 총량(입방미터에 의한다)
선적을 마친 시간 |
| (C) | 1 | 유성잔류물(유해액체물질세정수)의 처리 |
| | 2 | 해양시설 안에서 생긴 유성잔류물(유해액체물질세정수)의 종류 및 총량(입방미터에 의한다) |
| (D) | | 처리방법 |
| | 1 | |
| | 2 | 사고 및 그 밖의 이유에 의한 예외적인 기름(유해액체물질세정수)의 배출 |
| | 3 | 배출
배출 시간
배출된 기름(유해액체물질세정수)의 종류 및 양(입방미터에 의한다) |
| | | 배출 상황 및 이유 |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8. 5. 1.>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 검인 [] 변경검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5일 |
| 신청인 | 상호(사업장 명칭) 또는 법인명 | | 성명(대표자) |
| | 사업장 또는 법인 소재지 | | 전화번호 |
| 해양
시설 | 등록번호 | | 등록 연월일 |
| | 설치위치 | | 해양시설의 종류 |
| | 해양시설의 용도 | | |
| 변경
내용 | (변경 검인시에만 작성) | | |

「해양환경관리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변경검인)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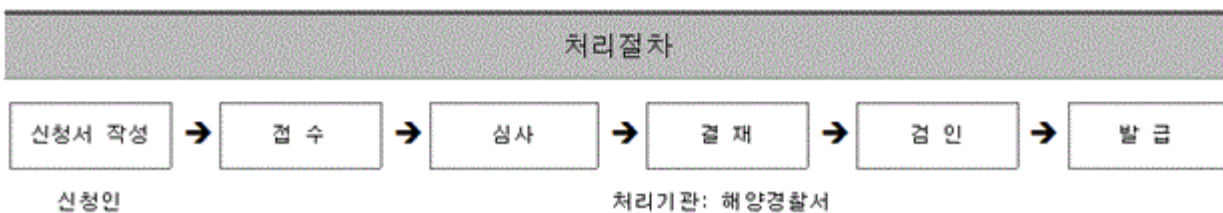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변경검인 시에는 변경된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1부 | 수수료 3,000원 |
|------|--|------------|



210mm×297mm(백상지 80g/㎡)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신설 2024. 6. 28.>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

[]신고서
[]변경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최초신고) 10일
(변경신고) 5일 |
| 신고인 | 상호(사업장 명칭) | 성명(대표자 성명) |
|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주소(사업장 소재지) | |
| 신고내용 |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 장소 | |
| |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용도(폐기물·기름·유해액체물질 등 오염물질의 종류 및 저장·처리 등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
| | 변경신고사항(변경신고의 경우만 작성합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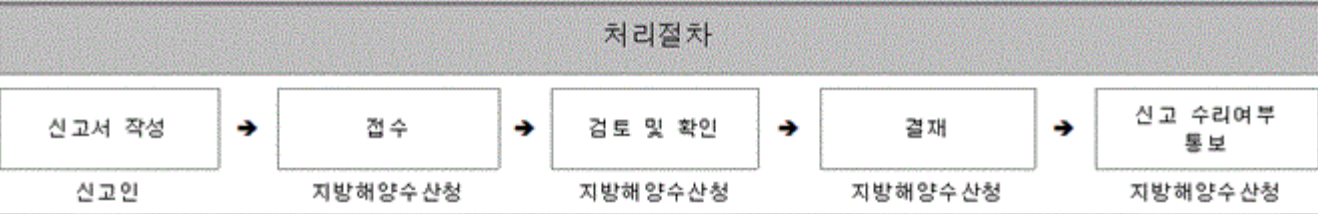
「해양환경관리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 신고 또는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〇〇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신고 | 1.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2.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위치도(설치 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합니다)
3.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운영계획서 |
| | 변경신고 | 1. 오염물질저장시설 신고증명서
2. 변경하려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신설 2024. 6. 28.>

(앞쪽)

제 호

오염물질저장시설 (변경)신고증명서성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업장
소재지)

신 고 사 항

상호 또는 사업장 명칭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 장소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용도

「해양환경관리법」 제3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변경신고사항

| 일자 | 내용 | 확인 |
|----|----|----|
| | | |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4서식] <신설 2024. 6. 28.>

오염물질저장시설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 | | 3일 |
| 신청인 | 상호(사업장 명칭) | 성명(대표자 성명) |
|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주소(사업장 소재지) | |
| 신청내용 | 오염물질저장시설 신고증명서 번호 | |
| | 오염물질저장시설 용도 | |
| | 재발급 사유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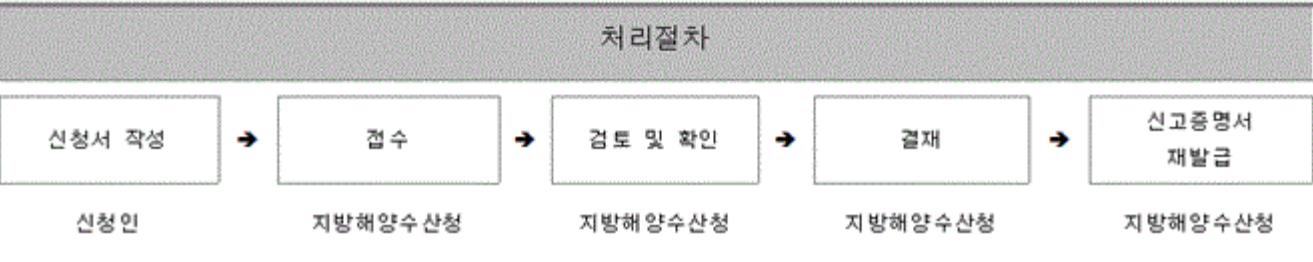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오염물질저장시설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〇〇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
| 첨부서류 | 오염물질저장시설 신고증명서(해당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
|------|--|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1. 6. 30.>

(앞쪽)

오염물질관리대장

발생년도: 년

(① 오염물질의 종류:)

(단위:톤)

[illegible]210mm × 297mm[인쇄용지(2급) 60g/m²]

(뒤쪽)

작성방법

1. ①란은 오염물질의 종류별로 각각 작성(「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오염물질로 한정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오염물질을 발생 일자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발생 및 처리량의 누계는 매월 말일로 마감 처리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 처리한다.
3. ②란의 성질·상태는 고상·액상으로 구분하여 적는다.
4. ④란의 운반자 및 처리자는 실제 폐기물 운반·처리를 담당한 사업자명을 적으며 처리방법은 중간처리 방법(일반소각·고온소각·재활용)을 적는다.
5. ⑤란의 처리잔량은 ②란(발생현황)에서 ③란(자가처리현황)과 ④란(위탁처리현황)을 제외한 량을 적는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개정 2026. 7. 1.>

해양오염 방제조치 명령서

| | | |
|------------|----------------------|--------------|
| 방 제
의무자 | 선명(선박번호, 총톤수) 또는 법인명 | 전화번호 |
| | 성명(직책) | 팩스번호 |
| 참고인 | 성명(법인명) | 전화번호 |
| | 방제업무자와의 관계 | 팩스번호 |
| 사고 개요 | | |
| 명령 사항 | | 조치 시한 |
| | | |
| 조치 해역 | | |
| 담당자 | 소속:
전화번호: | 성명:
팩스번호: |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 및 같은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배출방지 조치를 명합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같은 법 제12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같은 법 제64조제4항 및 제65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직접 조치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비용은 귀하가 부담하게 됩니다.

년 월 일

○○ 해양경찰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개정 2026. 7. 1.>

해양오염 방제조치 명령서

| | | |
|------------|----------------------|--------------|
| 방 제
의무자 | 선명(선박번호, 총톤수) 또는 법인명 | 전화번호 |
| | 성명(직책) | 팩스번호 |
| 참고인 | 성명(법인명) | 전화번호 |
| | 방제업무자와의 관계 | 팩스번호 |
| 사고 개요 | | |
| 명령 사항 | | 조치 시한 |
| | | |
| 조치 해역 | | |
| 담당자 | 소속:
전화번호: | 성명:
팩스번호: |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 및 같은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배출방지 조치를 명합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같은 법 제12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같은 법 제64조제4항 및 제65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직접 조치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비용은 귀하가 부담하게 됩니다.

년 월 일

○○ 해양경찰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3.6.19>

| | | | | |
|--|-----|-------|------------------|-----|
| (발신기관명) | | | | |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담당 |
| 문서번호: | | | 시행일: 년 월 일 | |
| 수신: 귀하 | | | 발신: | |
| 제목: 방제비용 납부통지서 | | | | |
| <p>귀하의 해양오염사고로 인하여 방제조치를 하였으므로 「해양환경관리법」 제 68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그에 든 방제비용을 알려드리니 다음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 | | |
| 1. 오염사고의 개요 | | | | |
| 2. 비용부담액 | | | | |
| 3. 납부기간 | | | | |
| 4. 납부방법 | | | | |
| 5. 납부장소 | | | | |
| <p>비고</p> <p>1. 비용내역: 별첨</p> <p>2. 위 비용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제 5항 및 「행정대집행법」 제5조·제6조에 근거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 하게 됩니다.</p> <p>3. 위 비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p> | | | | |

210mm × 297mm(신문용지 54g/m²)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삭제 <2020. 12. 4.>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7. 7. 28.>

해양오염방제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5일 |
| 신청인 | 상호(사업장 명칭) 또는 법인명 | | 자본금 | |
|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
| | 사업장 또는 법인 소재지 | | 전화번호 | |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선박·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3. 기술요원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기술요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기술요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7. 7. 28.>

유창청소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5일 |
| 신청인 | 상호(사업장 명칭) 또는 법인명 | 자본금 |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 사업장 또는 법인 소재지 | 전화번호 | |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창청소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선박·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3. 기술요원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기술요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기술요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삭제 <2020. 12. 4.>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삭제 <2020. 12. 4.>

[별지 제26호서식] 삭제 <2020. 12. 4.>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7. 7. 28.>

(앞쪽)

제 호

해양오염방제업 등록증

1. 성명(대표자):
2. 생년월일:
3. 상호:
4. 사업의 종류:
5. 사업소의 소재지: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5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해양경찰서장 인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뒤쪽)

| 변경사항 | | |
|------|----|----|
| 일자 | 내용 | 확인 |
| | | |

제 호(Registration No.)

유창청소업 등록증

Certificate of registration for Oil Hold Cleaning Business

1. 성명(대표자):

Owner:

2. 생년월일:

Date of Birth:

3. 상호:

Name of Company :

4. 사업의 종류:

Kind of Business :

5. 사업소의 소재지:

Address :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5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verified the registration as above according to the Article 70 of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the Article 55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and the Article 36(5)(3) of its Enforcement Regul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해양경찰서장 인

Commander of th Korea Coast Guard (stamp)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뒤쪽)

| 변경사항 | | |
|------|----|----|
| 일자 | 내용 | 확인 |
| | | |

[별지 제29호서식] 삭제 <2020. 12. 4.>

[별지 제30호서식] 삭제 <2020. 12. 4.>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0. 12. 4.>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변경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5일 |
| 신청인 | 상호(사업장 명칭) 또는 법인명 | | | |
|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
| | 사업장 또는 법인 소재지 | | 전화번호 | |
| 변경
내용 | | | | |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제업
· []유창청소업 등록사항의 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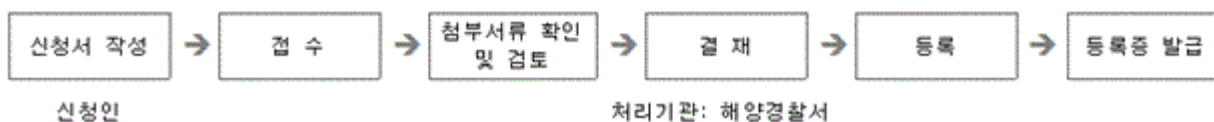
| | | |
|------|-----------------|---|
| 첨부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1.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1. 법인 동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기술요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기술요원 보유현
황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기술요
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
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2호서식] 삭제 <2020. 12. 4.>

[별지 제33호서식] 삭제 <2020. 12. 4.>

[별지 제34호서식] 삭제 <2020. 12. 4.>

[별지 제35호서식] 삭제 <2020. 12. 4.>

[별지 제36호서식] 삭제 <2020. 12. 4.>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7. 7. 28.>

| | | | | | | | | |
|---|------------|--------|---------------------|--------------|------------|--------------|-------------|--------------|
| 업소명 | | | | | | | | |
| 우편번호/ | | 주소/ | | 전화/ | | 팩스/ | | |
| 과명/ | | 과장/ | | 담당/ | | 담당자/ | | |
| | | | | | | 이메일/ | | |
| 문서번호 | | | | | | 시행일자 | | |
| 수신: | | 해양경찰서장 | | 발신: | | 인 | | |
| 제목: (년도 분기) 오염물질의 방제·청소·수거 처리실적서 | | | | | | | | |
| 업소명: | | | | 사업자등록번호: | | 업종: | | |
| 대표자: | | | | | | | | |
| 오염물질 수거·처리 실적(기간: ~) | | | | | | | | |
| 오염물질 수거 내역 | | | | | 오염물질 처리 내역 | | | |
| ① 일자 | ② 발급
번호 | ③ 종류 | ④ 위탁
업체명
(선명) | ⑤ 수거량
(톤) | ⑥ 처리
방법 | ⑦ 처리량
(톤) | ⑧ 처리
업체명 | ⑨ 보관량
(톤)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기재

① 오염물질의 수거일자 기재

② 오염물질수거확인증 발급번호 기재

③ 오염물질의 종류(기름/유해액체물질/폐기물) 기재

④ 오염물질 발생업체(선박)명 기재

⑤ 수거 오염물질량 기재

⑥ 오염물질처리방법(자가/위탁 처리) 기재

⑦ 수거(잔재) 오염물질 처리량 기재

⑧ 수거(잔재) 오염물질 처리업체명 기재

⑨ 수거(잔재) 오염물질 미처리량 기재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38호서식]

| 오염물질 방제·청소·수거 처리대장 | | | | | | | | |
|--------------------|------------|------|---------------------|--------------|------------|--------------|-------------|--------------|
| 오염물질 수거 내역 | | | | | 오염물질 처리 내역 | | | |
| ① 일자 | ② 발급
번호 | ③ 종류 | ④ 위탁
업체명
(선명) | ⑤ 수거량
(톤) | ⑥ 처리
방법 | ⑦ 처리량
(톤) | ⑧ 처리
업체명 | ⑨ 보관량
(톤)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기재

① 오염물질의 수거일자 기재

② 오염물질수거확인증 발급번호 기재

③ 오염물질의 종류(기름/유해액체물질/폐기물) 기재

④ 오염물질 발생업체(선박)명 기재

⑤ 수거 오염물질량 기재

⑥ 오염물질처리방법(자가/위탁 처리) 기재

⑦ 수거(잔재) 오염물질 처리량 기재

⑧ 수거(잔재) 오염물질 처리업체명 기재

⑨ 수거(잔재) 오염물질 미처리량 기재

작성시기

①란에서 ⑤란까지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을 발급하는 날 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210mm × 297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40호서식] 삭제 <2020. 12. 4.>

[별지 제41호서식] 삭제 <2020. 12. 4.>

[별지 제42호서식] 삭제 <2020. 12. 4.>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20. 12. 4.>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앞쪽)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법인 | 상호(사업장 명칭) 또는 법인명 | 성명(대표자) | |
|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 사업장 소재지 또는 법인 소재지 | | |
| 양도인, 피상속인, 합병 전 법인 | 상호(사업장 명칭) 또는 법인명 | 성명(대표자) | |
|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 사업장 소재지 또는 법인 소재지 | | |
| 권리·의무 승계일 | | | |
| 권리·의무 승계 사유 | | | |

「해양환경관리법」 제7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권리·의무 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인

해양경찰서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신고인 제출서류 | 1. 양도·양수, 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2.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증 1부. |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법인의 합병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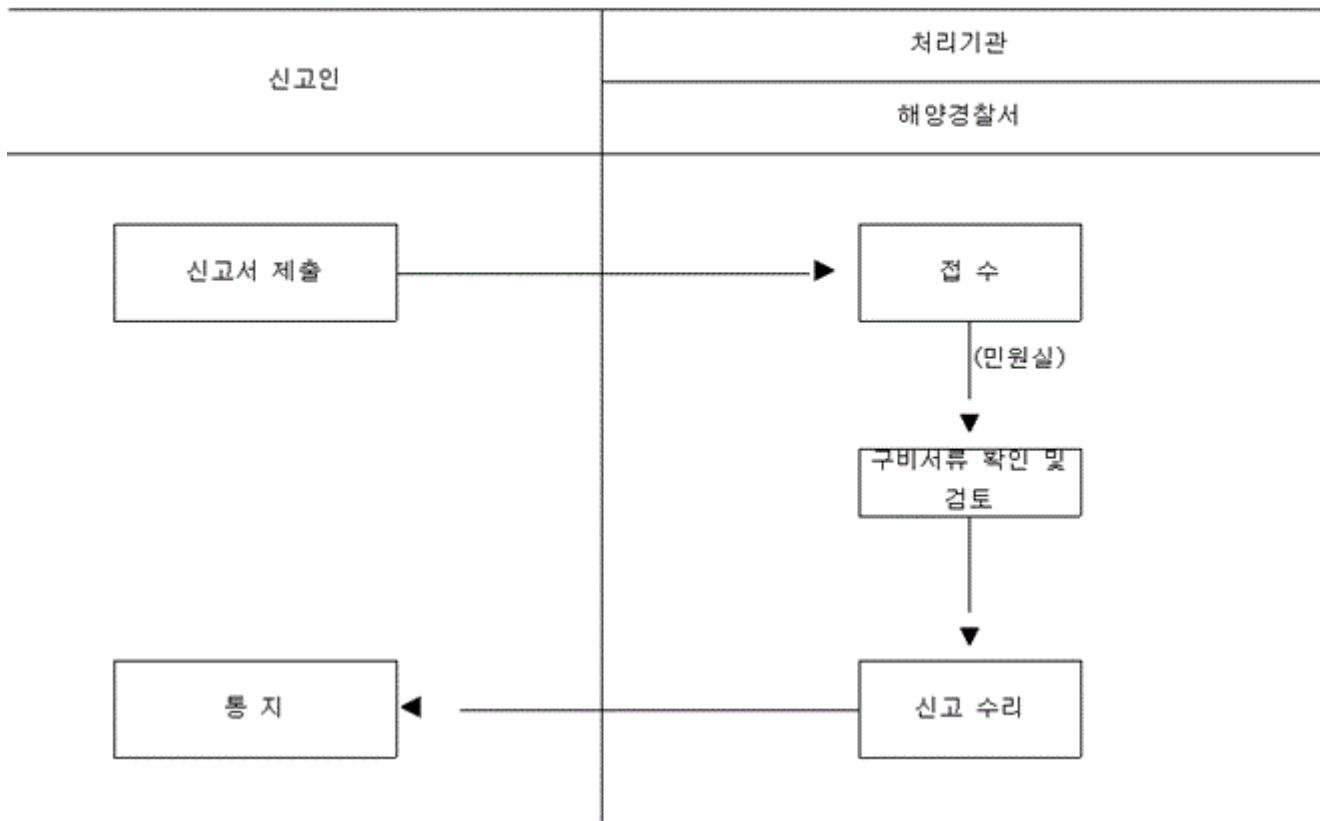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44호서식] 삭제 <2020. 12. 4.>

[별지 44호의2서식] 삭제 <2020. 12. 4.>

[별지 제45호서식] 삭제 <2020. 12. 4.>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 2서식] <개정 2017. 7. 28.>

침몰선박 정보 현황

| 1. 선박개요 | | | | | |
|----------------------|-------------------------------|--------------|--|------|--|
| 선박번호 | | 선 명 | | 용 도 | |
| 선체재질 | | 총톤수 | | 재화톤수 | |
| 길 이 | | 너 비 | | 깊 이 | |
| 소유자(운항자)의
성명 및 주소 | (전화/FAX:) | | | | |
| 2. 사고개요 | | | | | |
| 침몰일시 | | 침몰원인 | | 침몰수심 | |
| 침몰장소
(경위도) | | | | | |
| 사고개요
(구체적 기재) | | | | | |
| 피해사항 | 선박피해
(손상구획 및 범위) | | | | |
| | 오염피해
(오염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부상 등) | | | | |
| 3. 화물 및 연료유 정보 | | | | | |
| 화물 종류 | | 화물 적재량(침몰 시) | | | |
| | | | | | |
| | | | | | |
| 연료유 종류 | | 연료유량(침몰 시) | | | |
| | | | | | |
| 4. 기타(조치사항 및 참고사항) | | | | | |
| | | | | | |

※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침몰선박에 관한 정보를 기재합니다(미확인 사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46호서식] 삭제 <2011.9.29>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의2서식] 삭제 <2025. 1. 14.>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삭제 <2025. 1. 14.>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삭제 <2025. 1. 14.>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삭제 <2025. 1. 14.>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 삭제 <2025. 1. 14.>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삭제 <2025. 1. 14.>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2서식] 삭제 <2025. 1. 14.>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3서식] 삭제 <2025. 1. 14.>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삭제 <2025. 1. 14.>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삭제 <2025. 1. 14.>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삭제 <2025. 1. 14.>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의2서식] 삭제 <2025. 1. 14.>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삭제 <2024. 6. 28.>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삭제 <2024. 6. 28.>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 삭제 <2024. 6. 28.>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개정 2026. 7. 1.>

해양오염방제 자재 · 약제 형식승인 []변경 []면제 신청서

(알록)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5일(설비의 경우에는 3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 영문 |
| | 생년월일 | |
| | 주소 | (전화번호:) |
| 품명 | 한글 | 영문 |
| 형식 | | |
| 영업소 주소 및 명칭 | 한글 | |
| | 영문 | |
| 제작 · 제조소의 주소 및 명칭 | 한글 | |
| | 영문 |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변경 · 면제)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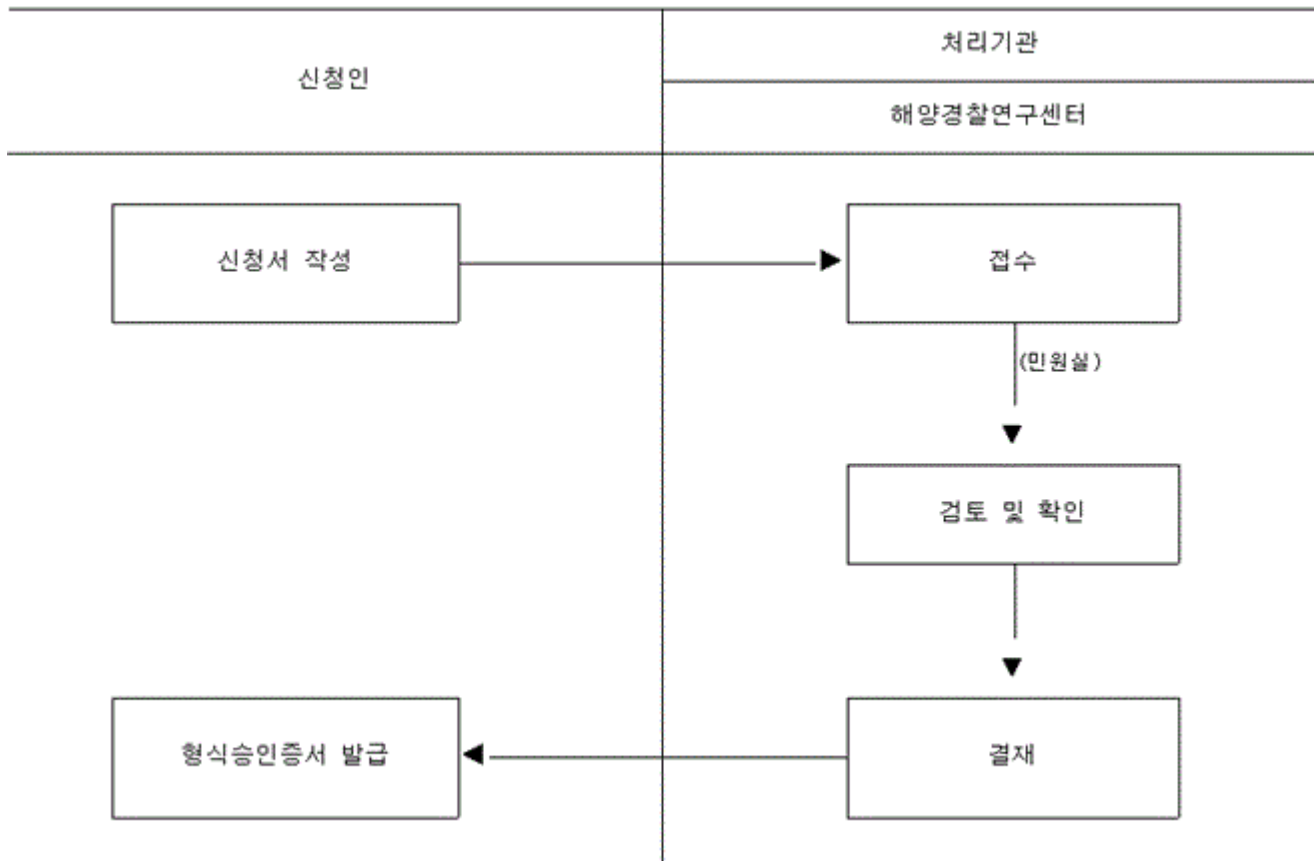
해양경찰연구센터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최초신청 | 1. 사용재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
| | 변경신청 | 1. 형식승인증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합니다)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면제신청 | 1. 사용재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2. 시험 · 연구 또는 개발 계획서 |

210mm × 297mm [백상지 80g/m²]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58호의2서식] <개정 2026. 7.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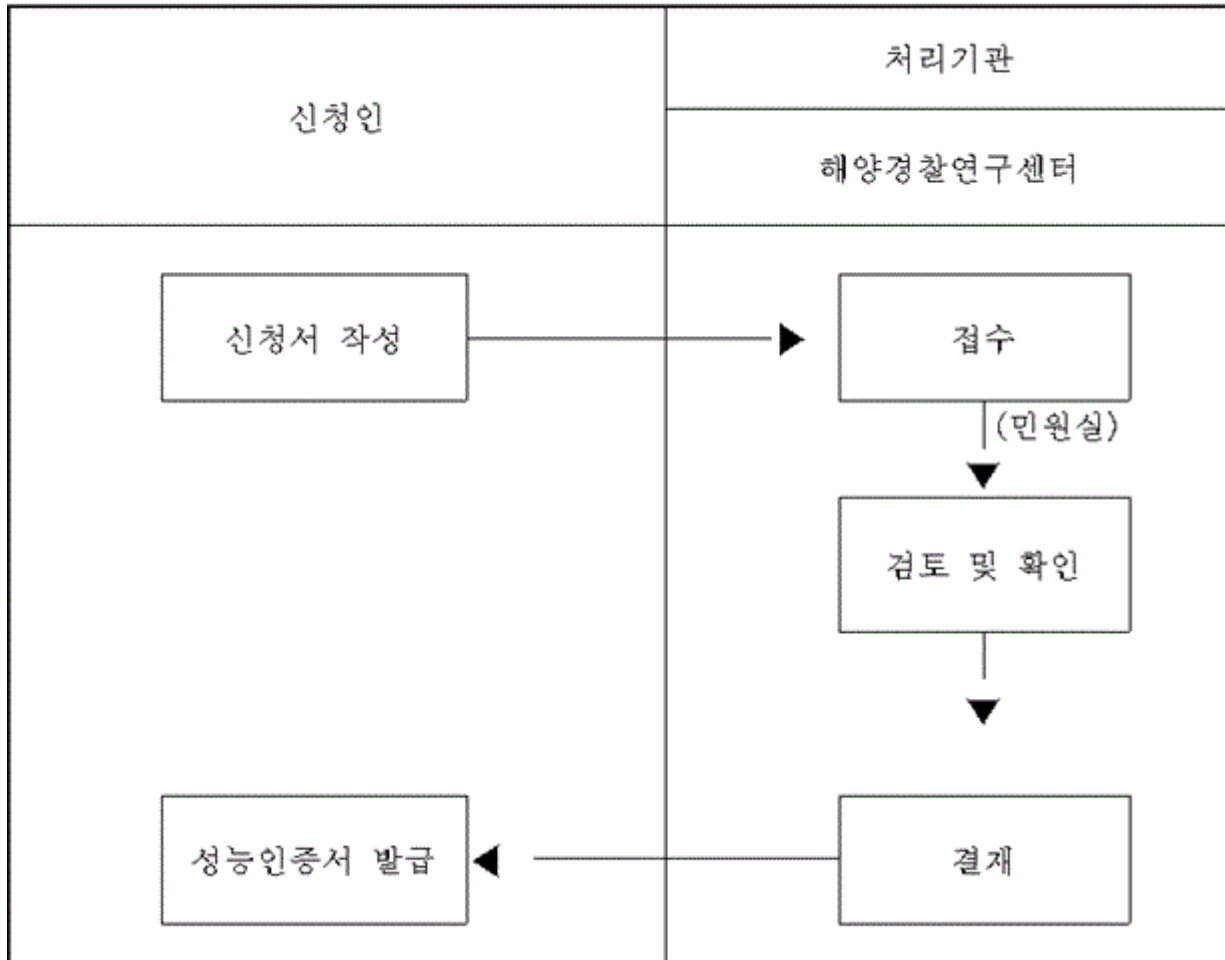
(앞쪽)

| | | | | | |
|---|-------------|----------|--|-------|------|
|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인증신청서 | | | | | 처리기간 |
| | | | | | 12개월 |
| 신청인 | ① 상호(사업장명칭) | 한글 | | 영문 | |
| | ② 성명(대표자) | | | ③생년월일 | |
| | ④ 주소 | (전화번호:) | | | |
| ⑤ 사업장 소재지 | | 한글 | | | |
| | | 영문 | | | |
| 신청내용 | ⑥ 제작사 | | | ⑦제작국 | |
| | ⑧ 자재·약제의 종류 | | | ⑨형 식 | |
| | ⑩ 상품명(고유명칭) | 한글 | | 영문 | |
| <p>「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의2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해양경찰연구센터장 귀하</p> | | | | | |
| 신청인 제출서류 | | | | | 수수료 |
| | | | | | 없음 |

210mm × 297mm(신문용지 54g/m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삭제 <2024. 6. 28.>

[별지 제60호서식] <개정 2026. 7. 1.>

(앞 쪽)

제 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증서

1. 주된 영업소:
2.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3. 자재·약제의 품명:
4. 자재·약제의 형식 및 규격:
5. 자재·약제의 성능시험성적서

번호:

발급연월일: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합니다.

년 월 일

해양경찰연구센터장 인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뒤 쪽)

<형식승인의 변경>

| 연 월 일 | 변경사항 | 변경조건 | 근거 | 확인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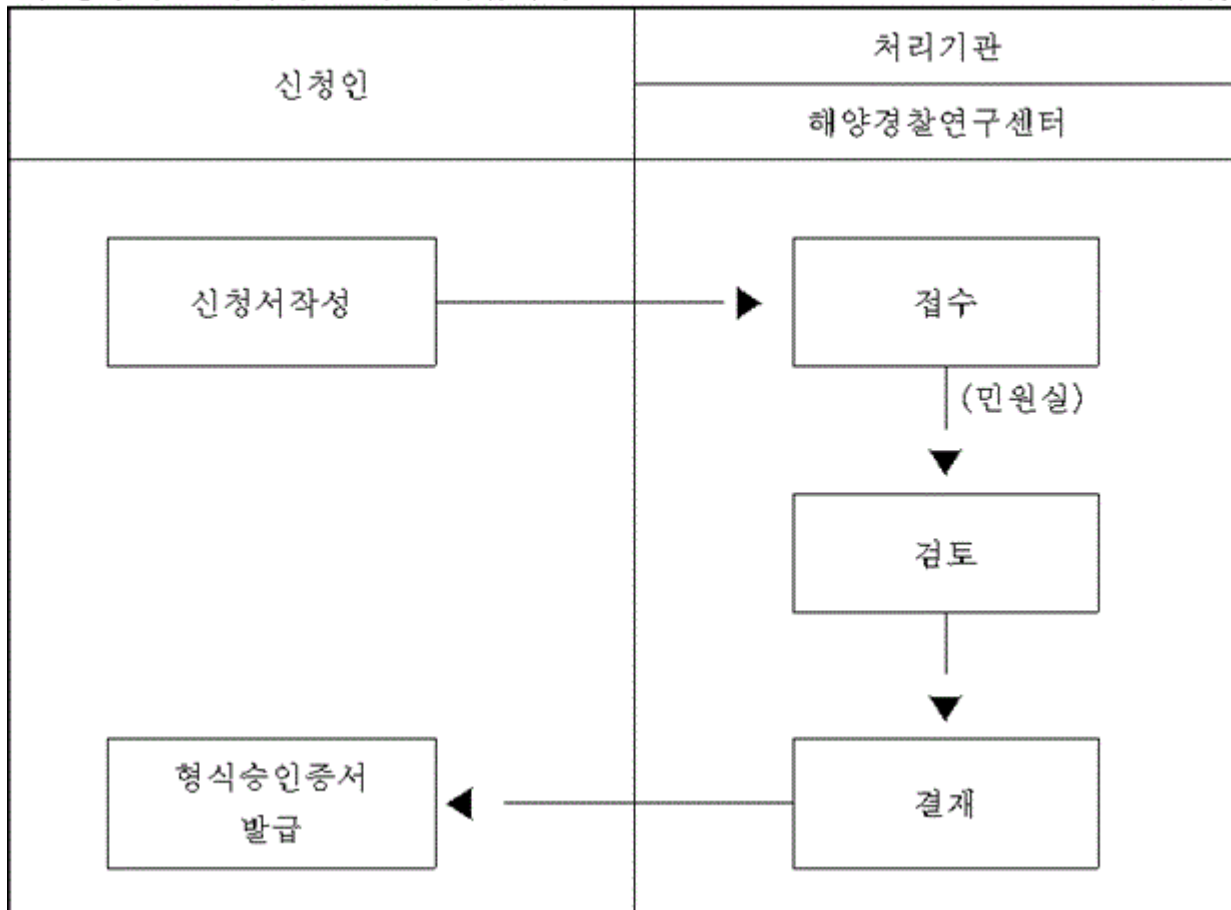
[별지 제60호의2서식] <개정 2026. 7. 1.>

| | | | | | |
|--|-------------|---------------------|--|-------|-----------|
| 성능인증번호 | | 형식승인대상외 자제·약제 성능인증서 | | | |
| 제 호 | | | | | |
| ① 상호(사업장명칭) | | 한글 | | 영문 | |
| ② 성명(대표자) | | | | | ③
생년월일 |
| ④ 주소 | | (전화:) | | | |
| ⑤ 사업장 소재지 | | 한글 | | | |
| | | 영문 | | | |
| 인증
내용 | ⑥ 제작사 | | | | ⑦ 제작국 |
| | ⑧ 자제·약제의 종류 | | | | ⑨ 형식 |
| | ⑩ 상품명(고유명칭) | 한글 | | 영문 | |
| ⑪ 성능인증 성적서 | | 발급기관 | | 발급연월일 | |
| | | 발급번호 | | | |
| <p>「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의2제6항에 따라 성능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해양경찰연구센터장 인</p> | | | | | |

210mm × 297mm(신문용지 54g/m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1호서식] 삭제 <2024. 6. 28.>

[별지 제62호서식] <개정 2024. 6.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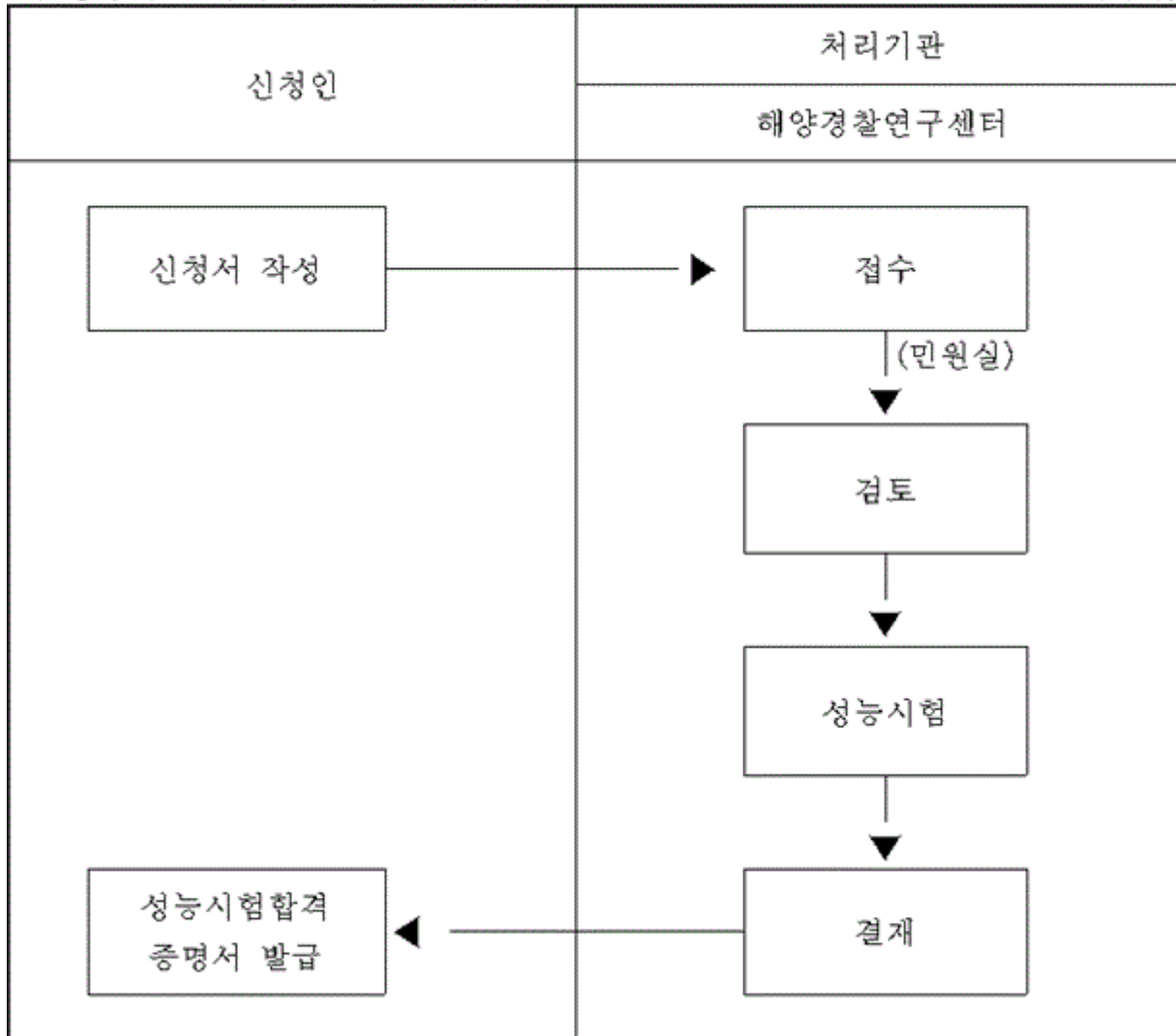
(앞쪽)

| | | |
|---|--------------------------------------|----------------|
| 자재·약제 성능시험신청서 | 처리기간 | |
| |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
유처리제, 유흡착제,
유겔화제 | 25일 |
| | 생물정화제제 | 60일 |
| ① 품명 | | |
| ② 형식 | | |
| ③ 제작·제조소의 위치 및 명칭 | | |
| ④ 제작·제조연월일 | | |
| ⑤ 제작·제조번호 | | |
| ⑥ 성능시험을 받으려는 장소 | | |
| <p>「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받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영업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p> <p>해양경찰연구센터장 귀하</p> | | |
| 구비서류
1. 자재·약제의 사양서 1부
2. 구조도면 및 작동설명서 각 1부 | | 수수료 |
| | | 제83조제1항에
따름 |

210mm × 297mm(신문용지 54g/m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62호의2서식] <개정 2026. 7.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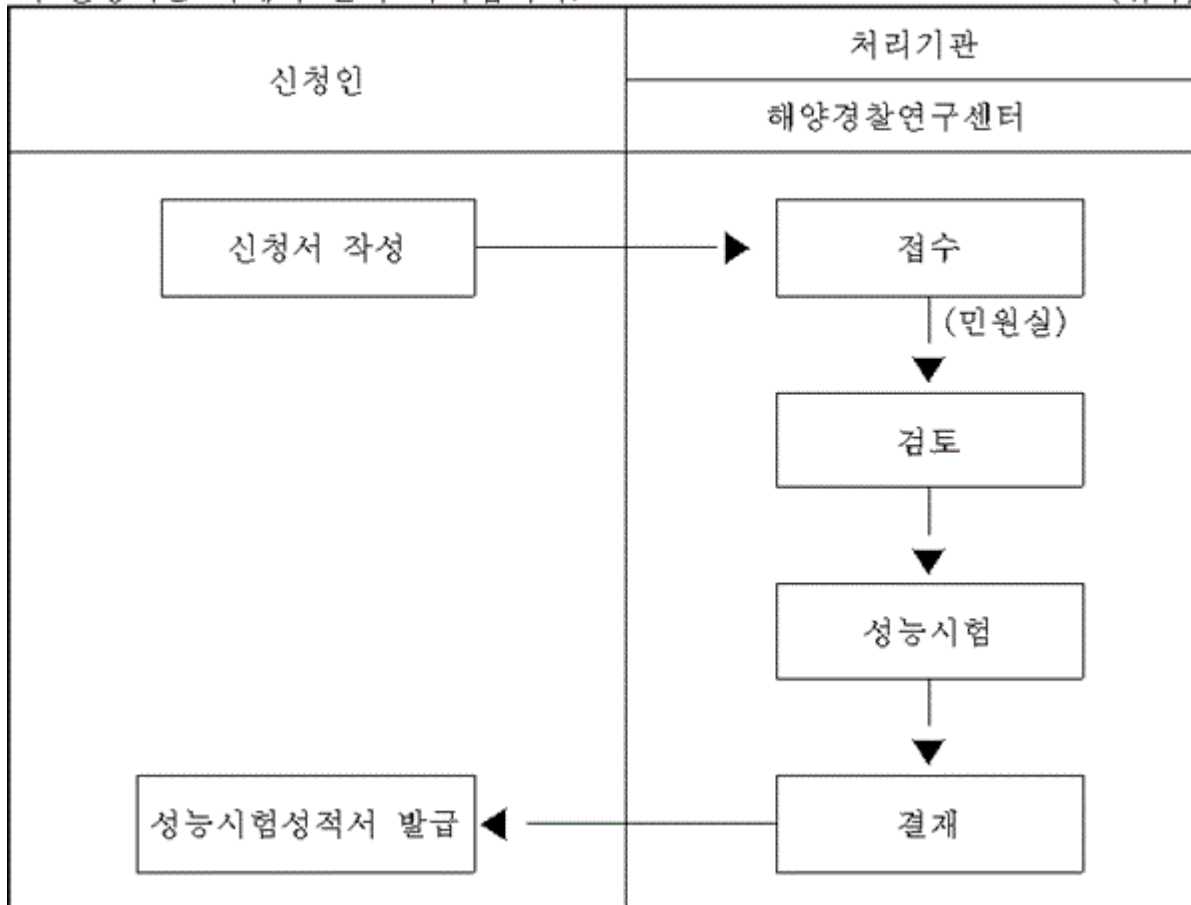
(앞쪽)

| | | | | | |
|---|---------------------------------|----|----------|------|----------------|
|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시험신청서 | | | | 처리기간 | |
| | | | | 12개월 | |
| 신청인 | ① 상호(사업장명칭) | | | | |
| | ② 성명(대표자) | | ③ 생년월일 | | |
| | ④ 주소 | | (전화번호:) | | |
| ⑤ 사업장 소재지 | | 한글 | | | |
| | | 영문 | | | |
| 신청
내용 | ⑥ 제작사 | | ⑦ 제작국 | | |
| | ⑧ 자재·약제의 종류 | | ⑨ 형식 | | |
| | ⑩ 상품명(고유명칭) | 한글 | | 영문 | |
| ⑥ 성능시험을 받으려는 장소 | | | | | |
| <p>「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의5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right;">해양경찰연구센터장 귀하</p> | | | | | |
| 구비
서류 | 1. 사양서 1부
2. 구조도면 및 사용설명서 1부 | | | | 수수료 |
| | | | | | 제83조제1항에
따름 |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삭제 <2024. 6. 28.>

[별지 제64호서식] <개정 2024. 6. 28.>

| | | |
|--|-----------|---------------|
| 제 호 | | 자재·약제 성능시험성적서 |
| ① 품명 | | |
| ② 형식 | | |
| ③ 설비용량 또는 자재·약제수량 | | |
| 형식승인
신청자 | ④ 상호 및 주소 | |
| | ⑤ 성명 | |
| ⑥ 제작·제조소(영업소)의 위치 | | |
| ⑦ 제작·제조연월 | | |
| ⑧ 제작·제조번호 | | |
| <p>위 자재·약제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제2항에 따른 성능 시험기준에 적합하므로 이 성적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해양경찰연구센터장 인</p> | | |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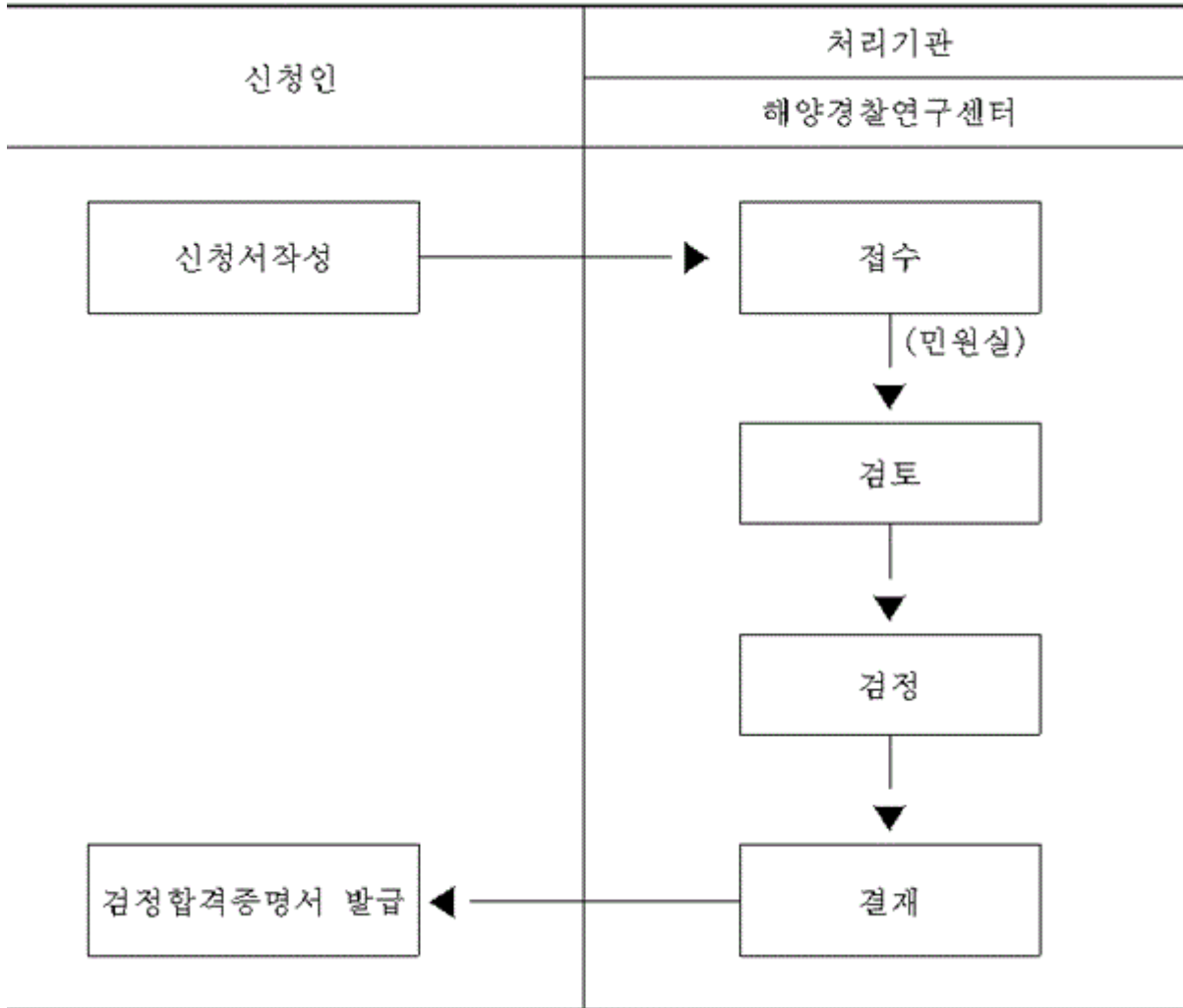
[별지 제64호의2서식] <개정 2026. 7. 1.>

| | | | | | |
|--|-------------|-------------------------|--|------|--|
| 번 호 | | 형식승인대상외 자재 · 약제 성능시험성적서 | | | |
| 제 호 | | | | | |
| ① 회사명 | | | | 전화번호 | |
| ② 성명(대표자) | | | | | |
| ③ 주소 | | | | | |
| 자재
·
약제 | ④ 종 류 | | | | |
| | ⑤ 형 식 | | | | |
| | ⑥ 상품명(고유명칭) | 한글 | | 영문 | |
| | ⑦시험방법 | | | | |
| | ⑦시험결과 | “별첨” | | | |
| <p>「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의5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성적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해양경찰연구센터장 </p> | | | | | |

210mm × 297mm(신문용지 54g/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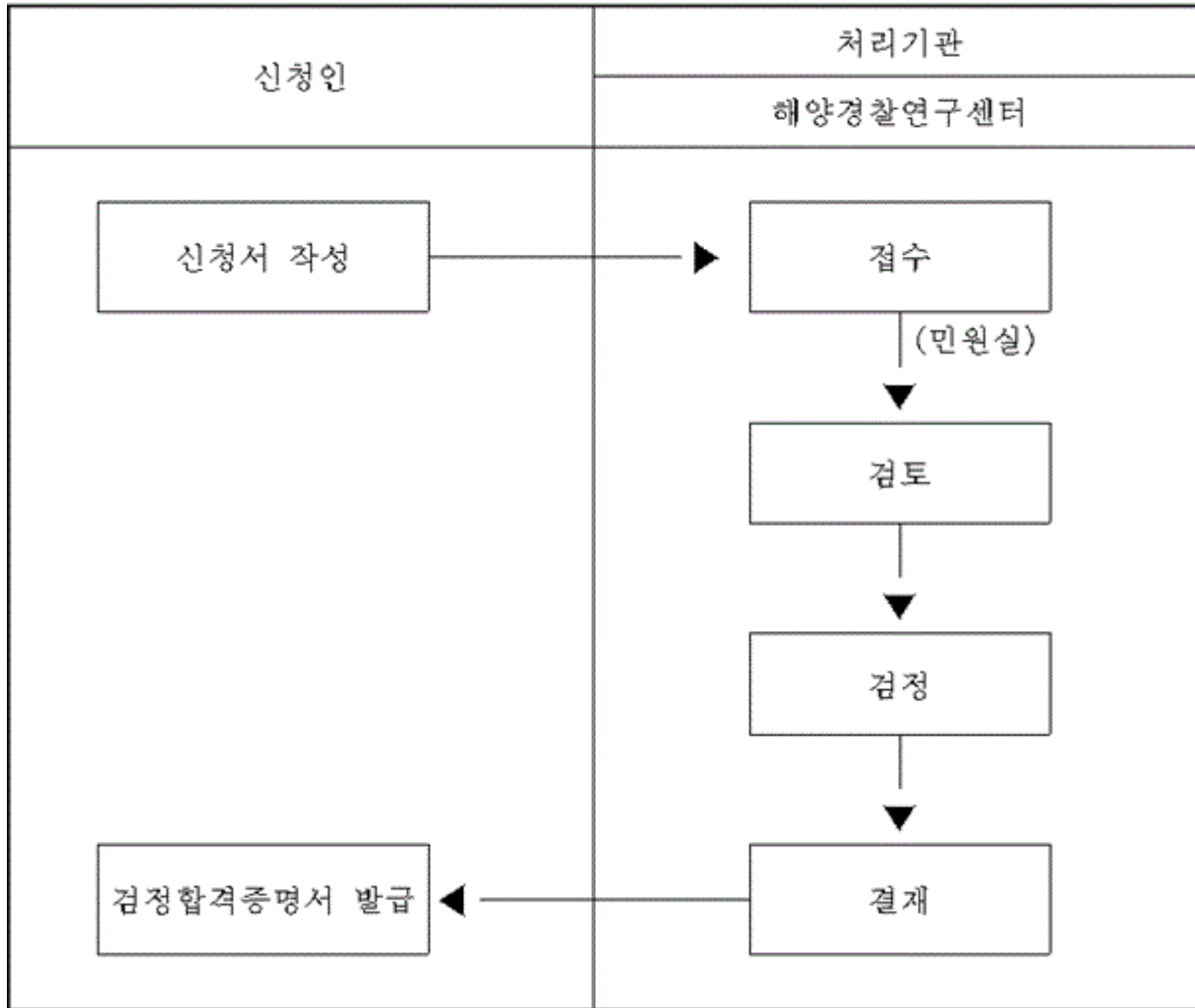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66호서식] <개정 2024. 6. 28.>

제 호

검정합격증명서
CERTIFICATE OF INSPECTION

1. 품명:
(Name of Article)
2. 형식 및 규격 :
(Type · Size · Capacity)
3. 수량:
(Quantity)
4. 형식승인번호:
(Approval No.)
5. 형식승인연월일:
(Date of Approval)
6. 제작(수입)자 성명:
(Name of Manufacturer or Importer)
7. 제작(수입)자 주소:
(Address of Manufacturer or Importer)
8. 제작(수입)연월일:
(Date of Manufacture or Import)
9. 제작번호:
(Serial No. of Manufacture)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라 검정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under the Article 70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년(Y) 월(M) 일(D)

해양경찰연구센터장 인

The Chief of Korea Coast Guard Research Center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별지 제66호의2서식] <개정 2026. 7. 1.>

제 호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검정합격증명서

CERTIFICATE OF INSPECTION ON MATERIALS AND CHEMICALS
OTHER THAN TYPE APPROVAL SUBJECT

1. 품명:
(Name of Article)
2. 형식 및 규격 :
(Type · Size · Capacity)
3. 수량:
(Quantity)
4. 성능인증번호:
(Performance Certificate No.)
5. 형식승인연월일:
(Date of Approval)
6. 제작(수입)자 성명:
(Name of Manufacturer or Importer)
7. 제작(수입)자 주소:
(Address of Manufacturer or Importer)
8. 제작(수입)연월일:
(Date of Manufacture or Import)
9. 제작번호:
(Serial No. of Manufacture)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의6에 따라 검정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under the Article 72-6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년(Y) 월(M) 일(D)

해양경찰연구센터장 인
(The Chief of Korea Coast Guard Research Center)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220g/m²)]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6호의3서식] <개정 2026. 7. 1.>

[]자재·약제 형식승인 을 받은 자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인증 지위 승계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법인 | 상호(사업장 명칭) 또는 법인명 | 성명(대표자) | |
|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 사업장 소재지 또는 법인 소재지 | | |
| 양도인, 피상속인, 합병 전 법인 | 상호(사업장 명칭) 또는 법인명 | 성명(대표자) | |
|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 사업장 소재지 또는 법인 소재지 | | |
| 권리·의무 승계일 | | | |
| 권리·의무 승계 사유 | | |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의8에 따라 형식승인(성능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연구센터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신고인 제출서류 | 1. 양도·양수·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2. 자재·약제 형식승인증서 또는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인증서의 사본 |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합병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 | | | | | | | | |
|--------|---|-----|---|-------------------------|---|-----|---|-----|
| 신고서 작성 | ➔ | 접 수 | ➔ | 검 토 | ➔ | 결 재 | ➔ | 통 지 |
| 신고인 | | | | 처리기관: 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연구센터 | | | | 신고인 |

210mm × 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67호서식] <개정 2026. 7.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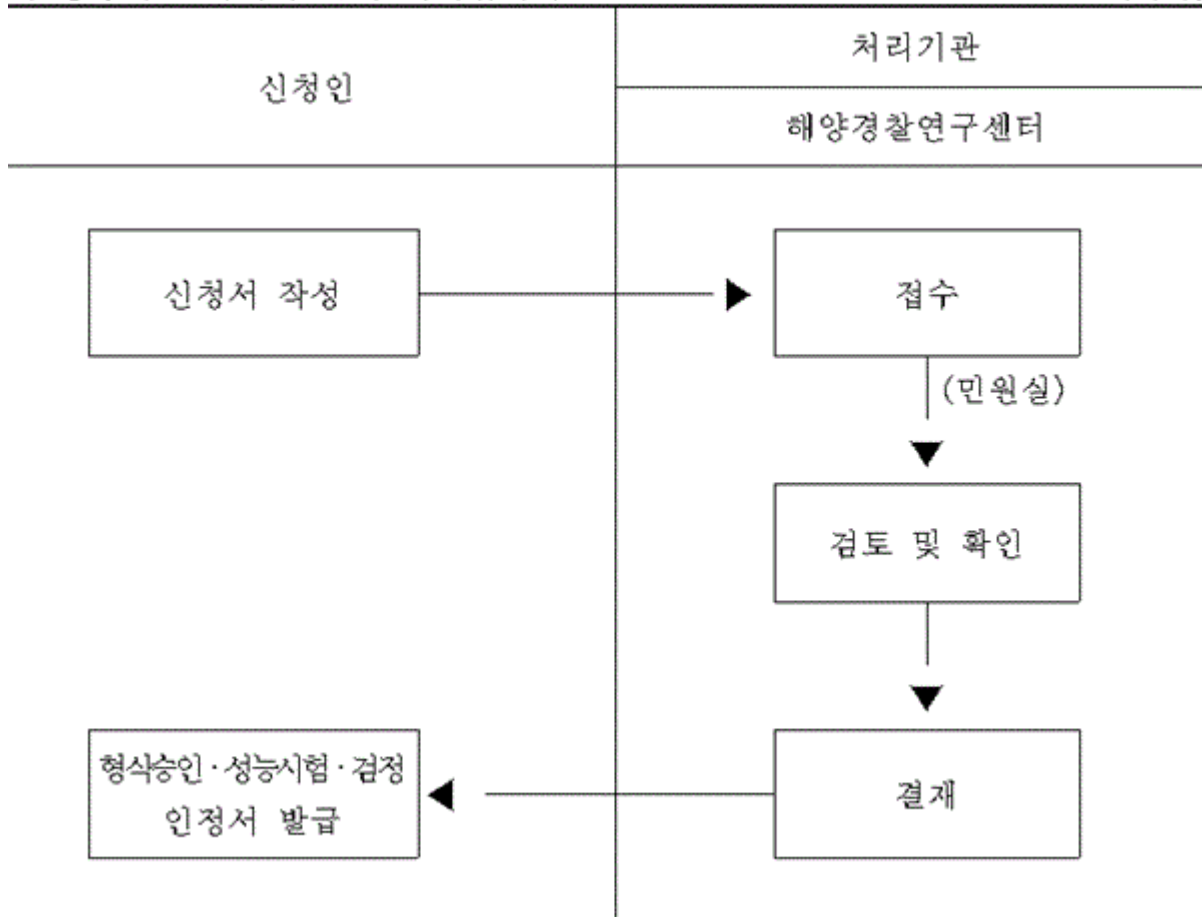
(앞쪽)

| | | | | |
|---|------|----------|------|------|
| 자재·약제의 형식승인·성능시험·검정인정 신청서 | | | | 처리기간 |
| | | | | 3일 |
| 신청인 | 성명 | | 생년월일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품명 | 한글 | | 영문 | |
| 형식 | | | 규격 | |
| 형식승인
협약당사국 | 국가명 | | 승인기관 | |
| | 승인품명 | | 승인번호 | |
| | 제작회사 | | 제조번호 | |
| 비치 선박명 | | | 선박번호 | |
| <p>「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에 따라 자재·약제에 대한 형식승인·성능시험·검정의 인정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해양경찰연구센터장 귀하</p> | | | | |
| 구비서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수수료 |
| | | | | 없음 |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68호서식] <개정 2026. 7. 1.>

제 호

자재·약제의 형식승인·성능시험·검정 인정서

1. 선박명:
2. 선박번호:
3. 품명:
4. 형식:
5. 용량또는규격:
6. 협약당사국 :
7. 협약국 승인기관:
8. 협약국 형식승인번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성능시험·검정을 받은 자재·약제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해양경찰연구센터장 인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별지 제69호서식] <개정 2017. 7.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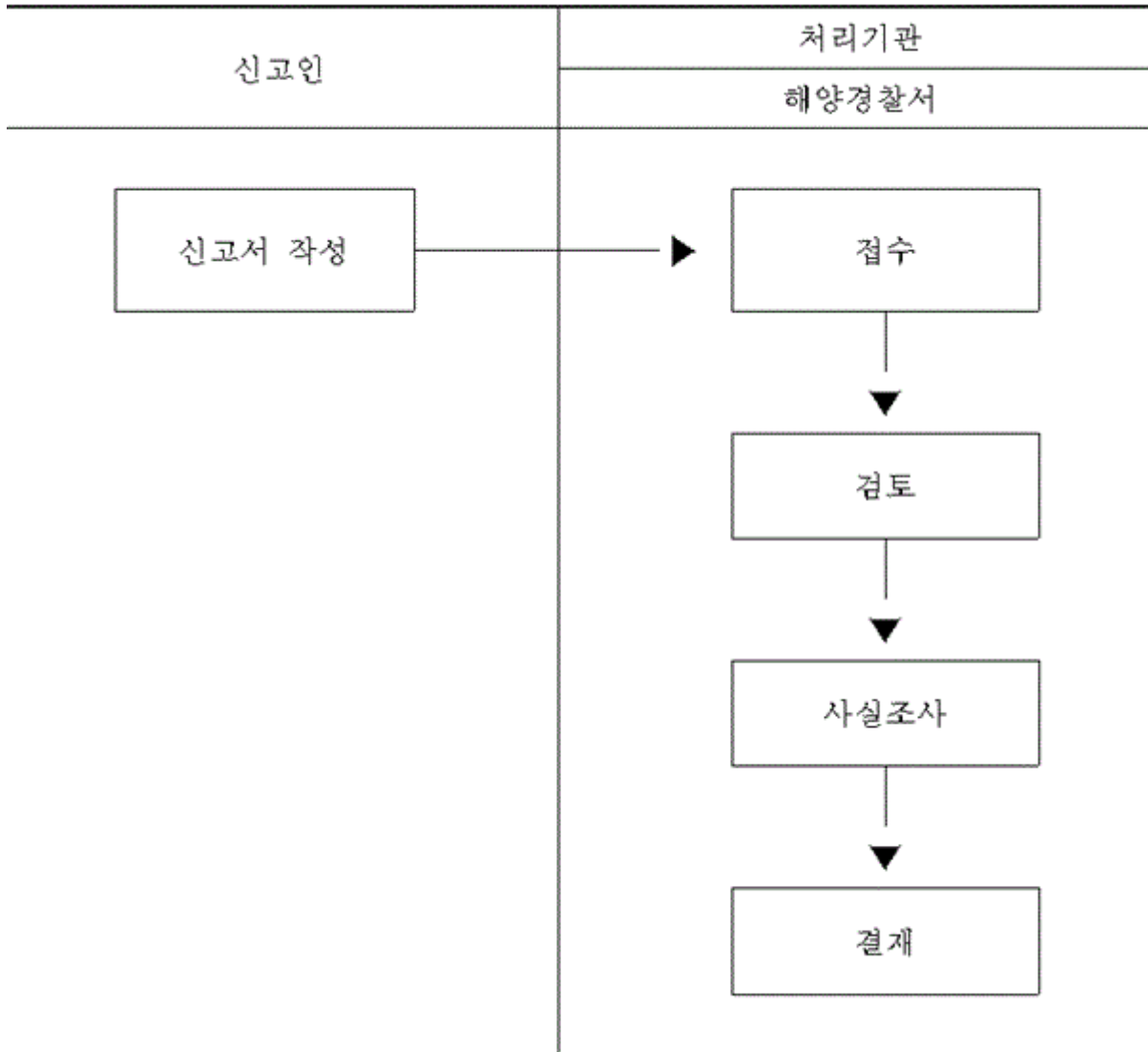
(앞쪽)

| | | | | |
|--|----------|--------|----------|------|
|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신고서 | | | | 처리기간 |
| | | | | 5일 |
| 신고인 | ① 명칭(상호) | | ② 대표자 | |
| | ③ 소재지 | (전화:) | | |
| 해체선박 | ④ 선명 | | ⑤ 국적(선적) | |
| | ⑥ 선종 | | ⑦ 선박번호 | |
| | ⑧ 톤수 | | | |
| 오염물질 | ⑨ 종류 | | ⑩ 추정량 | |
| | ⑪ 청소예정기간 | | | |
| | ⑫ 처리예정업체 | | | |
| ⑬ 해체작업위치 | | | | |
| ⑭ 해체사유 | | | | |
| ⑮ 비고 | | | | |
| <p>「해양환경관리법」 제1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라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고인: (서명 또는 인)</p> <p>해양경찰서장 귀하</p> | | | | |
| 구비서류 | | | | 수수료 |
| 1.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작업계획 1부
2. 해체장소사용허가서 또는 그 증명서류 1부
3. 해체할 선박의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오염물질의 처리실적 1부 | | | | 없음 |

210mm × 297mm(신문용지 54g/m²)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서식] 삭제 <2024. 6. 28.>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개정 2017. 7. 28.>

자재·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증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30일 |
| 신청인 | 상호(사업장 명칭) 또는 법인명 | | 법인등록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
| | 법인 또는 사업장 소재지 | | 전화번호 | |
| 신청
내용 | 성능시험 및 검증을 대행하려는 자재·약제의 종류 | | | |

「해양환경관리법」 제1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대행업무를 담당할 인력, 시설 및 장비현황 1부
3. 사업계획서 1부 |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 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서식] 삭제 <2024. 6. 28.>

[별지 제73호서식] <개정 2017. 7. 28.>

| | | | |
|--|----------------------------|--|--------|
| 지정번호 | 자재·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업무 대행자 지정서 | | |
| 제 호 | | | |
| 지정자 | ① 명칭(상호) | | |
| | ② 성명(대표자) | | ③ 생년월일 |
| | ④ 주소(사무소) | | |
| ⑤ 성능시험 및 검정대행
자재·약제의 종류 | | | |
| <p>「해양환경관리법」 제1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해양경찰청장 </p> | | | |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별지 제74호서식] <개정 2017. 7. 28.>

(앞쪽)

제 호

해양환경감시원증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사진)

위 사람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6조에 따른 해양환경감시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 [인]

50mm × 80mm[보존용지(1종) 190g/m²]

(뒤쪽)

Register Number:

CERTIFICATE
OF MARINE ENVIRONMENTAL INSPECTION OFFICER

Employed Office:

Rank:

Name:

Date of bir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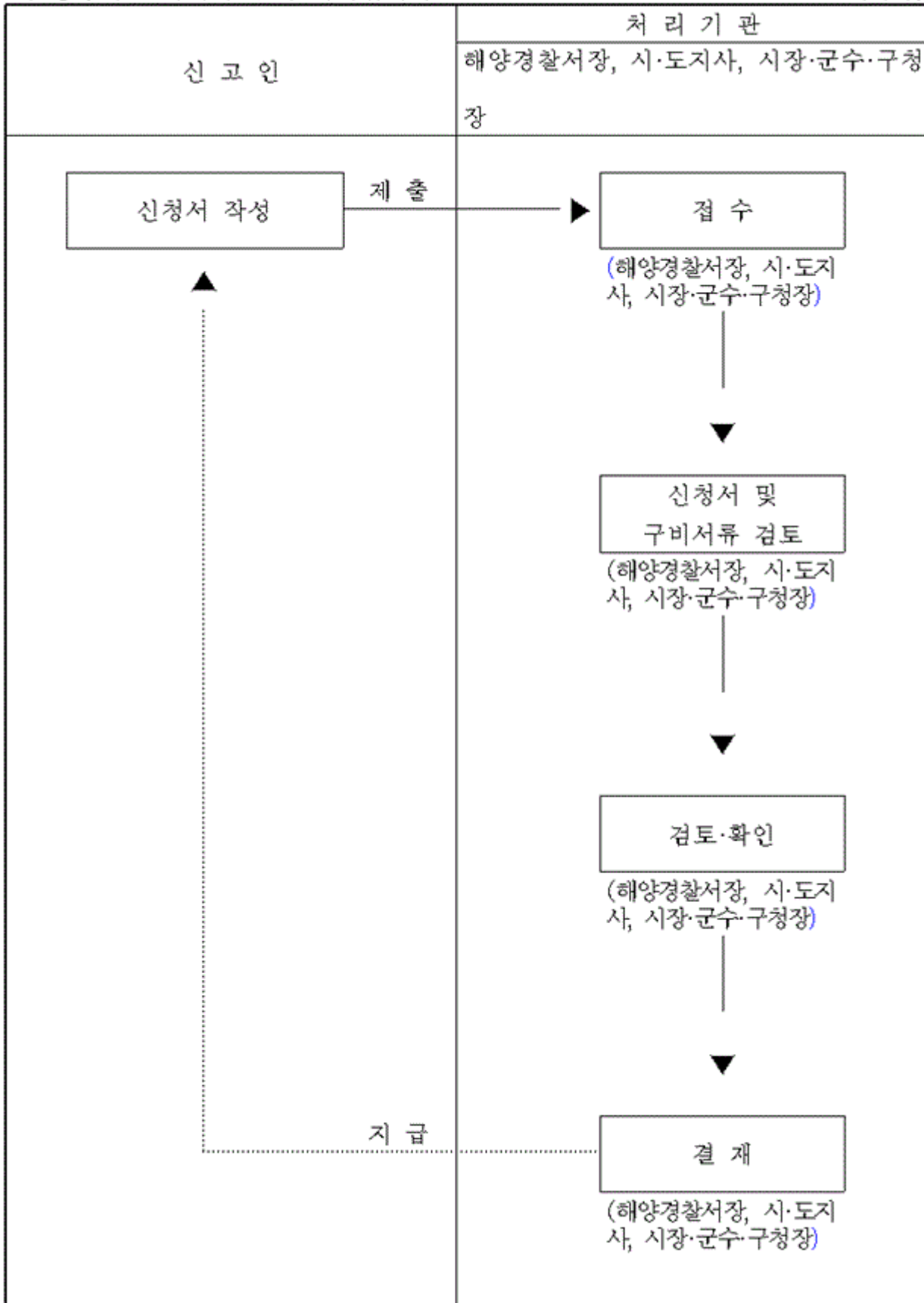
I certify that this identification of personnel is true on date
_____.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or
The Commissioner General of Korea Coast Guard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제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7. 1.] [해양수산부령 제798호, 2026. 6. 15.,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51 - 773 - 5834, 583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3. 14., 2011. 12. 23., 2013. 3. 24., 2019. 9. 11., 2021. 6. 30.>

1.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인도된 선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1975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나.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76년 6월 30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

다.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인도된 선박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개조가 이루어진 선박

(1) 197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2) 개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76년 6월 30일 이전에 해당 개조작업이 개시된 선박

(3)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주요개조가 종료된 선박

2. “1979년 12월 31일 후에 인도된 선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1975년 12월 31일 후에 해당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나.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76년 6월 30일 후에 건조된 선박

다. 1979년 12월 31일 후에 인도된 선박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개조가 이루어진 선박

(1) 1975년 12월 31일 후에 개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2) 개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76년 6월 30일 후에 해당 개조작업이 개시된 선박

(3) 1979년 12월 31일 후에 주요개조가 종료된 선박

3. “1982년 6월 1일 이전에 인도된 유조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조선을 말한다.

가. 1979년 6월 1일 이전에 해당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나.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80년 1월 1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

다. 1982년 6월 1일 이전에 인도된 선박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개조가 이루어진 선박

(1) 1979년 6월 1일 이전에 개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2) 개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80년 1월 1일 이전에 해당 개조작업이 개시된 선박

(3) 1982년 6월 1일 이전에 주요개조가 종료된 선박

4. “1982년 6월 1일 후에 인도된 유조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조선을 말한다.

가. 1979년 6월 1일 후에 해당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나.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80년 1월 1일 후에 건조된 선박

다. 1982년 6월 1일 후에 인도된 선박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개조가 이루어진 선박

(1) 1979년 6월 1일 후에 개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2) 개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80년 1월 1일 후에 해당 개조작업이 개시된 선박

(3) 1982년 6월 1일 후에 주요개조가 종료된 선박

5. “1996년 7월 6일 전에 인도된 유조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조선을 말한다.

가. 1993년 7월 6일 전에 해당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나.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94년 1월 6일 전에 건조된 선박

다. 1996년 7월 6일 전에 인도된 선박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개조가 이루어진 선박

(1) 1993년 7월 6일 전에 개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2) 개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94년 1월 6일 전에 해당 개조작업이 개시된 선박

(3) 1996년 7월 6일 전에 주요개조가 종료된 선박

6. “1996년 7월 6일 이후에 인도된 유조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조선을 말한다.

가. 1993년 7월 6일 이후에 해당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나.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94년 1월 6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

다. 1996년 7월 6일 이후에 인도된 선박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개조가 이루어진 선박

(1) 1993년 7월 6일 이후에 개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2) 개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94년 1월 6일 이후에 해당 개조작업이 개시된 선박

(3) 1996년 7월 6일 이후에 주요개조가 종료된 선박

7. “2002년 2월 1일 이후에 인도된 유조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조선을 말한다.

가. 1999년 2월 1일 이후에 해당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나.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99년 8월 1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

다. 2002년 2월 1일 이후에 인도된 선박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개조가 이루어진 선박

- (1) 1999년 2월 1일 이후에 개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 (2) 개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99년 8월 1일 이후에 해당 개조작업이 개시된 선박
 - (3) 2002년 2월 1일 이후에 주요개조가 종료된 선박
8.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인도되는 유조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조선을 말한다.
- 가. 2007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 나.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2007년 7월 1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
 - 다.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인도된 선박
 -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개조가 이루어진 선박
 - (1) 2007년 1월 1일 이후에 개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 (2) 개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2007년 7월 1일 이후에 해당 개조작업이 개시된 선박
 - (3)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주요개조가 종료된 선박
9. “2010년 8월 1일 이후에 인도되는 선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 가. 2007년 8월 1일 이후에 해당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 나.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2008년 2월 1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
 - 다. 2010년 8월 1일 이후에 인도된 선박
 -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개조가 이루어진 선박
 - (1) 2007년 8월 1일 이후에 개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 (2) 개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2008년 2월 1일 이후에 해당 개조작업이 개시된 선박
 - (3) 2010년 8월 1일 이후에 주요개조가 종료된 선박
10. “건조된 선박”이란 선박의 용골(선박 바닥 중앙의 길이 방향 지지대)이 거치되거나 이와 동등한 건조단계에 있는 것을 말한다.
11. “동등한 건조단계”란 선박의 전체 구조물 건적중량의 1퍼센트 또는 50톤 이상의 조립이 이루어진 단계를 말한다.
12. “주요개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조를 말한다.
- 가. 선박의 길이, 너비, 깊이 또는 운송능력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개조
 - 나. 선박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 다. 선박의 사용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개조
13. “유조선”이란 화물창의 대부분이 산적한 기름을 운반하기 위한 구조로 된 선박을 말한다.
14. “국내항해”란 우리나라 항간의 항해를 말한다.
15. “국제항해”란 우리나라의 항에서 우리나라 밖의 외국항으로 가는 항해 또는 그 반대의 항해를 말한다.
16. “분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모든 형태의 화장실이나 소변소로부터 나오는 배출물과 쓰레기
 나. 의무실, 병실 등의 의료구역의 세면기, 세탁통 및 배수구를 통하여 나오는 배출물
 다. 살아 있는 동물이 들어있는 장소로부터의 배출물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배출물과 혼합된 폐수
17. “총톤수”란 「선박법」 제3조제1항 또는 「어선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총톤수(국제 항해에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국제총톤수)를 말한다.
18. “국제특별해역”이란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1978년 의정서 및 1997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것을 포함하며, 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국제해사기구(IMO)가 지정한 특별해역을 말한다.
19. “유성찌꺼기(sludge)”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료유 및 윤활유를 청정할 때 생기는 폐유
 나. 기름여과장치로부터 분리된 폐유
 다. 기관구역에서 기름의 누출 등으로 생기는 폐유
 라. 폐유압유 및 폐윤활유 등 선박의 운항 중에 발생하는 폐유
20. “혼합물탱크(slop tank)”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한 탱크를 말한다.
 가. 유조선 또는 유해액체물질 산적운반선의 화물창 안의 화물잔류물 또는 화물창 세정수
 나. 화물펌프실 바닥에 고인 기름, 유해액체물질 또는 포장유해물질의 혼합물
21. “분리평형수”란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 외의 물질의 적재를 위하여 영구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탱크에 적재된 선박평형수(平衡水)로서 화물용 관(管) 또는 연료유계통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것을 말한다.
22. “맑은평형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조선의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요건 이상으로 세정된 선박평형수
 나.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의 경우에는 유해액체물질을 운송한 후 제11조에 따라 세정하고 비운 탱크에 적재된 선박평형수
23. “기름여과장치”란 기름이 섞여있는 폐수를 유분함유량 0.0015퍼센트(15ppm)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해양오염방지설비를 말한다.
24. “응고성 물질”이란 유해액체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녹는점이 섭씨 15도 미만의 물질인 경우에는 화물을 내릴 때의 온도가 그 물질의 녹는점보다 섭씨 5도 미만의 높은 범위 안에 있는 온도의 물질
 나. 녹는점이 섭씨 15도 이상의 물질인 경우에는 화물을 내릴 때의 온도가 그 물질의 녹는점보다 섭씨 10도 미만의 높은 범위 안에 있는 온도의 물질
25. “고점성 물질”이란 제3조제1항제1호의 X류물질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Y류물질로서 화물을 내릴 때의 온도에서 해당 물질의 점도가 50밀리파스칼초 이상인 물질을 말한다.
26. “검용선”이란 기름이나 고체화물을 산적(散積)상태로 적재할 수 있도록 설계·건조된 선박을 말한다.

27. “검사기준일”이란 제39조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또는 제48조에 따른 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에 속하는 날로서 해당 증서의 유효기간 기산일(중간검사를 받아야 할 시기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 중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중간검사의 완료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씩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제3조(유해액체물질의 분류) ①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1. X류 물질 :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자원 또는 인간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유해액체물질
 2. Y류 물질 :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자원 또는 인간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거나 해양의 쾌적성 또는 해양의 적합한 이용에 위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해양배출을 제한하여야 하는 유해액체물질
 3. Z류 물질 :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자원 또는 인간의 건강에 경미한 위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해양배출을 일부 제한하여야 하는 유해액체물질
 4. 기타 물질 : 「위험화학품 산적운송선박의 구조 및 설비를 위한 국제코드」 제18장의 오염분류에서 기타 물질로 표시된 물질로서 탱크세정수 배출 작업으로 해양에 배출할 경우 현재는 해양자원, 인간의 건강, 해양의 쾌적성 그 밖에 적법한 이용에 위해가 없다고 간주되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
 5. 잠정평가물질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류되어 있지 아니한 액체물질로서 산적(散積)운송하기 위한 신청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산적된 유해액체물질에 의한 오염규제를 위한 규칙」 부록 1에 정하여진 유해액체물질의 분류를 위한 지침에 따라 잠정적으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한 물질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의 세부 분류기준 및 분류된 유해액체물질의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포장유해물질) 법 제2조제8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제5조(유해방오도료) 법 제2조제9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생물체에 파괴작용을 하는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료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21. 12. 23., 2025. 10. 31.>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방오도료 용도의 제한물질로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포함한 도료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모든 용도의 금지물질로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포함한 도료
3. 디우론을 포함한 도료

4. 국제해사기구가 유해방오도로로 정한 도로

제6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규제해역) ① 법 제2조제1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신설 2023. 9. 1.>

1. 질소산화물
2. 황산화물

② 법 제2조제1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이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1. 12. 23., 2013. 3. 24., 2013. 5. 15., 2023. 9. 1., 2025. 8. 12.>

1. 발틱해역(보스니아만, 핀란드만 및 스카게락해협을 스카우를 지나는 북위 57도 44.8분의 위도선을 경계선으로 하는 발틱해의 입구를 포함한 고유의 발틱해역)
2. 다음 경계 내에 있는 북해해역
 - 가. 북위 62도의 남쪽과 서경 4도의 동쪽 사이
 - 나. 스카게락해협(남쪽 한계는 북위 57도 44.89분의 스카우에서 동쪽으로 그은 위도선)
 - 다. 영국해협과 서경 5도의 동쪽, 북위 48도 30분의 북쪽으로의 영국해협 사이

2의2. 별표 1의2에 따른 북아메리카 해역

2의3. 별표 1의3에 따른 캐리비안 해역

2의4. 별표 1의4에 따른 지중해 해역

3. 국제해사기구가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한 해역

[제목개정 2023. 9. 1.]

제7조(고정식·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 법 제2조제1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고정식·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이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저광업을 위한 고정식·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이하 “시추선 및 플랫폼”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08. 10. 31., 2011. 3. 4., 2013. 3. 24., 2013. 5. 15.>

제8조(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23. 9. 1.>

1. 분뇨의 경우 : 별표 2의 요건
2. 분뇨 외의 폐기물의 경우 : 별표 3의 요건

제9조(선박으로부터의 기름 배출) 법 제2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4.>

1. 선박(시추선 및 플랫폼을 제외한다)의 항해 중에 배출할 것
2. 배출액 중의 기름 성분이 0.0015퍼센트(15ppm) 이하일 것. 다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해저광물(석유 및 천연가스)에 한한다)의 탐사·채취 과정에서 발생한 물의 경우에는 0.004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름오염방지설비의 작동 중에 배출할 것. 다만, 시추선 및 플랫폼에서 스킴 파일[skim pile, 분리된 기름을 수집하는 내부 칸막이(baffle plate)를 가진 바닥이 개방된 수직의 파이프]의 설치를 통하여 기름을 배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유조선에서 화물유가 섞인 선박평형수, 세정수, 선저폐수 등을 배출하는 방법 등)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유조선에서 화물유가 섞인 선박평형수, 화물창의 세정수 및 선저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유조선에서 화물창의 선박평형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2호의 세정도 요건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한다.

③ 선박에서 분리평형수 및 맑은평형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3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한다.

④ 선박에서 발생하는 유성혼합물 등은 별표 4 제4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저장·처리되어야 한다.

제11조(유해액체물질의 배출해역, 예비세정 및 배출방법) 법 제2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유해액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요건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한다.

제12조(세정된 선박평형수의 배출방법) ① 법 제2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유해액체물질의 산적운반에 이용되는 화물창(선박평형수의 배출을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세정된 선박평형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한다.

1. 섭씨 20도에서 5킬로파스칼 이상의 증기압을 가지는 유해액체물질의 산적운반에 이용되는 화물창에서 세정된 선박평형수일 것
2. 제1호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을 선박에서 내린 후 통풍장치로 화물창의 화물잔류물을 제거할 것

제12조의2(극지해역에서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 등의 배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극지(極地)해역에서 선박으로부터 폐기물,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제 8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2. 13.]

제13조(오염물질의 해양배출)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라 선박 오염사고에 대한 방제조치 중에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름, 유해액체물질 또는 이들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 등은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제13조의2(폐기물의 배출률 승인)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배출률[선박의 흘수(吃水) 및 속력에 따른 시간당 폐기물 배출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승인받아야 하는 폐기물은 제14조 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분뇨저장탱크를 설치한 선박에서 발생하는 마쇄하지 않았거나 소독하

지 않은 분뇨로 한다.

②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제8조제1호 및 별표 2에 따라 마쇄하지 않았거나 소독하지 않은 분뇨를 배출할 수 있는 해역을 말한다.

③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배출물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출물 표를 작성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당 선박의 배출물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최대허용 배출물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배출물 표에 별표 5의2에 따른 배출물 승인 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text{최대허용 배출물}(\text{m}^3/\text{h}) = 0.00926 \times \text{선박의 평균속력}(\text{knot}) \times \text{선박의 흘수}(\text{m}) \times \text{선박의 너비}(\text{m})$$

⑤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한 선박의 소유자(선박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선박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폐기물을 배출한 장소(경도 및 위도를 말한다), 배출량, 배출 당시 선박의 속력 및 흘수를 기관일지에 기재하고, 당직 기관사와 기관장이 서명해야 한다.

<신설 2020. 11. 19.>

[본조신설 2019. 2. 13.]

제14조(분뇨오염방지설비의 대상선박·종류 및 설치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그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저장·처리하기 위한 설비(이하 “분뇨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11호 및 「어선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위생설비 중 대변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와 대변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수상레저기구(이하 “수상레저기구”라 한다)의 소유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3. 4., 2013. 5. 15., 2014. 11. 19., 2017. 7. 28., 2020. 11. 19., 2023. 7. 6.>

1.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선박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이 16인 미만인 부선은 제외한다)

2.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이 16명 이상인 선박

3.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에 따른 승선정원이 16명 이상인 선박

4. 소속 부대의 장 또는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정한 승선인원이 16명 이상인 군함과 경찰용 선박

② 제1항에 따른 분뇨오염방지설비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14., 2011. 3. 4., 2011. 12. 23., 2013. 5. 15., 2015. 1. 8.>

1. 다음 각 목의 분뇨오염방지설비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할 것

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형식승인한 분뇨처리장치

나.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형식승인한 분뇨마쇄소독장치

다. 분뇨저장탱크

2. 분뇨를 수용시설로 배출할 수 있도록 외부배출관을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외부배출관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분뇨를 수용시설로 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부배출관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시추선 및 플랫폼

나. 「선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선박의 길이(어선의 경우에는 「어선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배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4미터 미만인 선박
다. 수상레저기구

③ 제1항에 따른 분뇨오염방지설비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별표 6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작동되어야 한다.<개정 2013. 5. 15.>

제15조(기름오염방지설비 등의 설치기준)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기름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이하 “기름오염방지설비”라 한다)와 폐유저장을 위한 용기를 갖추어야 하는 대상선박, 기름오염방지설비와 폐유저장을 위한 용기의 설치·비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름오염방지설비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별표 8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작동되어야 한다.

③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기름의 배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손상복원성 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할 대상선박 및 시기 : 별표 9
2. 이중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할 대상선박 및 시기 : 별표 10
3. 선박 연료유 탱크의 이중선체 구조 : 별표 11
4. 선박의 화물창 등의 구조기준 : 별표 12
5. 선박의 이중선체구조 등의 기준 : 별표 13
6. 복원성기준 : 별표 14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함, 경찰용 선박 및 이를 보조하는 공용선박은 기름오염방지설비와 폐유저장을 위한 용기를 갖추어야 하는 대상 선박 또는 해양사고 시 기름배출 방지를 위한 선체구조 등의 설치대상 선박에서 제외한다.<신설 2011. 3. 4.>

제16조(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설치) ① 유해액체물질을 산적운반하기 위하여 건조되거나 개조된 선박(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로서 유해액체물질을 산적운반하는 유조선 포함한다)의 소유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별표 15의 기준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는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별표 16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작동되어야 한다.<개정 2013. 5. 15.>

제17조(화물창의 구조 및 배치의 기준) ① 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반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박의 충돌, 좌초 또는 그 밖의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유해액체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액체의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기준에 따라 화물창을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제18조(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 ① 제16조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이하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배출규제의 개요
2. 선박의 장치와 설비의 취급기술에 관한 사항
3. 화물의 취급방법과 화물을 선박에서 내리는 것에 관한 사항
4. 화물창의 세정, 잔류물의 배출과 선박평형수의 적재·배출방법에 관한 사항

② 제16조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의 검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검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검사증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09. 3. 26., 2011. 4. 11., 2015. 1. 8., 2024. 6. 25.>

1.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2. 삭제<2009. 3. 26.>
3. 선박에 실을 수 있는 유해액체물질의 목록

③ 선박을 국제항해에 사용하려는 선박의 소유자는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를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가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에 검인표시를 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5. 1. 8.>

⑤ 국제협약의 당사국으로부터 검인을 받은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는 이 조에 따라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9조(화물창 및 연료유탱크에의 선박평형수 적재 제한) ①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유조선”이란 분리평형수탱크가 설치된 유조선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②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1979년 12월 31일 후에 인도된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개정 2008. 3. 14., 2013. 3. 24.>

1.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
2. 총톤수 4천톤 이상의 선박

제20조(화물창 및 연료유탱크에의 선박평형수 적재 허용)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1. 겸용선이 안전하게 하역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교량, 그 밖의 장애물 밑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또는 운하에서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비바람이 심한 날씨에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부유시설 등을 이용하여 정밀검사 또는 두께 측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화물창의 수압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1조(선수탱크 등에의 기름적재 금지 대상선박) 법 제2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총톤수 400톤 이상인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08. 10. 31., 2013. 3. 24.>

1. 1982년 1월 1일 이후에 건조계약이 체결된 것
2. 건조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1982년 7월 1일 이후에 건조된 것

제22조(포장유해물질의 운송요건) 법 제29조에 따라 선박을 이용하여 포장유해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의 포장·표시 및 적재방법 등의 요건에 관하여는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6조를 준용한다.

제23조(선박오염물질기록부 비치대상선박)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24. 6. 25.>

1.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총톤수 400톤 미만의 부선으로서 선박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이 0명인 부선은 제외한다)
2.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이 15명 이상인 선박(운항속력으로 1시간 이내의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유조선 외의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21. 6. 30.>

1. 총톤수 100톤[군함과 경찰용 선박의 경우에는 경하배수톤수(사람, 화물 등을 적재하지 않은 선박 자체의 톤수) 200톤] 미만의 선박
2. 선저폐수가 생기지 아니하는 선박

제24조(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기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때
 - 가. 배출일시
 - 나. 선박의 위치(경도 및 위도를 말한다). 이 경우 화물잔류물은 배출의 시작과 종료된 위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 다. 배출된 폐기물의 종류

- 라. 폐기물 종류별 배출량(단위는 미터톤으로 한다)
- 마. 작업책임자의 서명
- 2. 폐기물을 수용시설 또는 다른 선박에 배출할 때
 - 가. 배출일시
 - 나. 항구, 수용시설 또는 선박의 명칭
 - 다. 배출된 폐기물의 종류
 - 라. 폐기물 종류별 배출량(단위는 미터톤으로 한다)
 - 마. 작업책임자의 서명
- 3. 폐기물을 소각할 때
 - 가. 소각의 시작 및 종료 일시
 - 나. 선박의 위치(경도 및 위도를 말한다)
 - 다. 소각량(단위는 미터톤으로 한다)
 - 라. 작업책임자의 서명
- 4. 법 제22조제3항제1호·제2호 또는 합성어망의 분실과 같이 폐기물을 사고 또는 그 밖의 예외 규정에 따라 해양에 배출할 때
 - 가. 사고 일시
 - 나. 사고 시 선박의 위치(경도 및 위도를 말한다) 또는 항구명
 - 다. 사고 시 배출된 폐기물의 종류 및 양
 - 라. 처분, 유실 또는 손실의 상황과 그 사유 및 일반 참고사항
- ②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름기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
 - 1. 모든 선박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연료유탱크에 선박평형수의 적재 또는 연료유탱크의 세정
 - 나. 연료유탱크로부터의 선박평형수 또는 세정수의 배출
 - 다. 기관구역의 유성찌꺼기 및 유성잔류물의 처리
 - 라. 선저폐수의 처리
 - 마. 선저폐수용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의 상태
 - 바. 사고,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예외적인 기름의 배출
 - 사. 연료유 및 윤활유의 선박 안에서의 수급
 - 2. 유조선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화물유를 선박에 싣는 것
 - 나. 항해 중 화물유의 선박 안에서의 이송
 - 다. 화물유를 선박에서 내리는 것
 - 라. 화물창 및 맑은평형수탱크에 선박평형수를 싣거나 배출하는 것
 - 마. 화물창의 세정(원유에 의한 세정을 포함한다)

바. 선박평형수의 배출(분리평형수탱크에서의 배출은 제외한다)

사. 선박평형수용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의 상태

아. 혼합물탱크에서 혼합물을 배출하는 것

자. 화물창의 잔류물처리

③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해액체물질기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선박 안에서 화물을 옮기는 것과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것에 관한 사항
 2. 화물의 잔류물 또는 혼합물을 수용시설에 배출시 그 배출에 관한 사항
 3. 화물창의 세정에 관한 사항
 4. 화물창 세정수, 선박평형수, 잔류물의 해양배출에 관한 사항 또는 그 정화방법에 관한 사항
 5. 화물창에 선박평형수를 싣거나 배출하는 것에 관한 사항
 6. 사고,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유해액체물질의 예외적인 배출에 관한 사항
- ④ 제1항에 따른 폐기물기록부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고, 제2항에 따른 기름기록부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으며, 제3항에 따른 유해액체물질기록부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24조의2(전자기록부의 기재 사항 등) ① 법 제30조의2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국제협약 부속서 6 제13규칙에 따라 질소산화물의 배출 제어에 관하여 기록해야 하는 사항(이하 “질소산화물배출기록”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6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부의 설비 및 보안 등에 관한 기술요건을 말한다.

③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적 정보기록장치나 시스템(이하 “전자기록부”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선박의 소유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전자기록부 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선박의 명칭과 총톤수 등 선박의 제원(諸元)
2. 전자기록부 제조업체의 명세
3. 별표 16의2에 따른 전자기록부의 설비 및 보안 등에 관한 기술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1.]

제25조(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비치대상 등) ① 법 제31조에 따라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이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라 한다)를 갖추어두어야 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23., 2013. 5. 15.>

1. 기름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갖추어두어야 하는 선박
 - 가.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
 - 나. 총톤수 400톤 이상의 유조선 외의 선박(군함, 경찰용 선박 및 국내항해에만 사용하는 부선은 제외한다)

다. 시추선 및 플랫폼

2. 유해액체물질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갖추어두어야 하는 선박 :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

② 제1항에 따른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의 방제조직에 관한 사항
 2. 유출사고 발생 시 선박의 선장이 취하여야 할 보고의 절차에 관한 사항
 3. 유출을 줄이기 위하여 선박의 선원이 취하여야 할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4. 선박의 주요제원과 선체구조도면 및 주요 배관장치의 배치도면
 5. 선박의 선원에 대한 방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유출사고 발생 시 그 사실을 통보할 연안 당사국의 기관명칭 및 방제에 필요한 사항
 7. 기름유출사고 발생 시 육상에서 제공하는 전산화된 손상복원성 및 잔존강도에 대한 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사항(재화중량톤수 5천톤 이상의 유조선에 한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기름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와 유해액체물질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는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26조(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 ①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신청서에 선박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을 국제항해에 사용하려는 자는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8.>

② 법 제31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2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8. 5. 1.>

③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변경검인을 받으려는 선박의 소유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변경검인신청서에 변경 작성된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5. 1.>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인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검인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에 별표 17에 따른 검인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8., 2018. 5. 1.>

제27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 승무대상 선박) 법 제3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08. 10. 31., 2013. 3. 24.>

1. 총톤수 150톤 이상인 유조선
2. 총톤수 400톤 이상인 선박[국적취득조건부로 나용선(裸傭船)한 외국선박을 포함한다]. 다만, 부선 등 선박의 구조상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제27조의2(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검인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에는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

서(이하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이송하는 작업방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7의2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 3. 24., 2023. 9. 1.>

③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검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원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선장 및 직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된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 및 영어로 된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18., 2015. 1. 8.>

④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검인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에 별표 17에 따른 검인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5. 1. 8.>

[본조신설 2011. 12. 23.]

제27조의3(선박대선박 기름화물 이송작업의 기록) ① 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이송량, 이송시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2023. 9. 1.>

1.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이송시간 및 장소
2.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종류, 양 및 탱크의 식별번호
3. 별표 17의2 제6호에 따른 사항

② 선박의 선장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기름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2. 23.]

제27조의4(작업계획의 보고사항 등) ① 선박의 선장은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이송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작업 시작 48시간 전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작업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8., 2024. 6. 25.>

1.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이송과 관련 있는 유조선의 국적, 선명, 선박번호(국제해사기구 번호), 호출부호 및 예상 도착시간
2.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이송작업 시작 일시 및 장소
3.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이송작업을 정박 중 또는 항해 중에 수행하는지의 여부
4.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종류 및 양
5.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예상 이송기간
6.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이송작업에 대한 작업책임자 및 담당자에 관한 사항
7.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를 비치하고 있는지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선장은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보고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작업 시작 48시간 전에 최소한 제1항제2호(이송장소는 제외한다)

다)의 사항을 먼저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이송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제1항 각 호의 나머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선박의 선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보고한 선박의 예상 도착시간이 6시간 이상의 차이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8.>

④ 제1항제6호에 따른 작업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3. 3. 24., 2024. 6. 25.>

1. 해당 선박에 대하여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는 선장의 승무자격 이상을 갖출 것
2. 유조선의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작업에 대한 경험이 있을 것
3.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안전한 이송작업을 위하여 지정·고시한 해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식이 있을 것
4. 비상상황 및 기름방제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을 것

[본조신설 2011. 12. 23.]

[제목개정 2024. 6. 25.]

제28조(선박에서의 오염물질의 수거·처리) ①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서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거·처리하게 하여야 하는 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23., 2018. 5. 1.>

1. 기름, 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의 화물잔류물. 다만,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기름을 배출하거나 제11조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의 배출기준에 따라 배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포장유해물질과 그 포장용기
3. 다음 각 목의 플라스틱제품을 포함한 모든 플라스틱제품
 - 가. 합성로프
 - 나. 합성어망
 -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쓰레기봉투
 - 라. 독성 또는 중금속 잔류물을 포함할 수 있는 플라스틱제품의 조각재
4. 납, 카드뮴, 수은, 육가크롬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중금속이 0.01무게퍼센트(100ppm) 이상 포함된 쓰레기

②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선박에서 제1항 각 호의 오염물질을 수거·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을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를 준용한다.

③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오염물질을 수거·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물질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

1. 선박의 선박명, 총톤수, 선적항 및 소유자
2. 폐기물처리업자(사업장의 명칭 및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수거한 오염물질의 종류 및 수거량
4. 오염물질 수거에 참여한 선박의 선원에 관한 사항
5. 오염물질 수거일자

[제목개정 2018. 5. 1.]

제29조(방오시스템의 사용기준 등) 선박에 방오도료 또는 이를 이용한 설비 등(이하 “방오시스템”이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별표 18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설치·사용하여야 한다.

제30조(대기오염방지설비의 설치기준 등) ①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선박에 별표 19의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설비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별표 20의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작동되어야 한다.

제30조의2(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 대상선박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별표 20의2에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으로서 외국에 선박을 매각하거나 외국에서 수리·폐선 등을 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은 제외한다. <개정 2019. 2. 13.>

② 법 제41조의2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2. 13.>

1. 선박의 수선간장(「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에 따른 수선간장을 말한다)이 변경되는 경우
2. 선박의 너비 또는 깊이가 변경되는 경우
3. 선박의 지정된 건현(乾舷)이 증가되는 경우. 다만, 입항하려는 항만의 수심이나 재화중량톤수의 제한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선박의 지정된 건현이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선박의 추진기관의 합계출력이 5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

③ 법 제41조의2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란 선박을 개조하는 목적이 선박의 사용연한을 실질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2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란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계산에 관계되는 변수가 변경되어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가 변경되는 선박의 개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3. 5. 15.]

제30조의3(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이란 별표 20의3 제1호에

다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별표 20의3 제2호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적용대상 선박을 말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을 국제해사기구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개월 이내에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9. 1.]

제30조의4(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대상 등) ① 법 제41조의3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국제대기오염방지증서를 발급받은 선박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선박은 제외한다. <개정 2019. 2. 13.>

1. 시추선 및 플랫폼
2. 추진기관이 없는 선박
3.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으로서 외국에 선박을 매각하거나 외국에서 수리·폐선 등을 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선박
- ②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이하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라 한다)의 기재사항, 작성방법 및 검사기준은 별표 20의4와 같다. <개정 2020. 12. 24.>
- ③ 법 제41조의3제2항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검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검사 신청서에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12. 24.>
-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가 제2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0. 12. 24.>

[본조신설 2013. 5. 15.]

제30조의5(선박연료유 사용량 등의 보고 등) ① 법 제41조의4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 9. 1.>

1. 선박에서 사용한 연료유의 종류와 사용량(단위는 톤으로 한다)
2. 선박의 운항거리와 운항시간
3.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 ② 법 제41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하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이라 한다)을 보고하고, 법 제41조의4제3항에 따라 검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보고 및 검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선박국적증서 사본

2.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및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 사본
3. 신청 직전의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 사본(최초로 검증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보고 대상 기간(이하 “보고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선박연료유 공급서 사본
5. 보고기간 동안의 선박의 운항거리와 운항시간, 선박연료유의 종류 및 사용량이 기재된 서류 사본
6. 보고기간의 시작일·중간일(보고기간의 절반이 되는 날을 말한다)·종료일의 기관일지 및 선박연료유 사용량을 보정한 경우 해당일의 기관일지 사본
- ③ 법 제41조의4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1조의4제3항에 따른 검증 결과가 적합한 경우 별지 제5호의 6서식의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검증확인서”라 한다)의 유효기간은 검증확인서를 발급한 날부터 그 다음 연도의 5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의4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발급되는 검증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검증확인서를 발급한 날부터 그 다음다음 연도의 5월 31일까지로 한다.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에 대한 검증 결과를 국제해사기구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증확인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24.]

- 제30조의6(선박에너지효율지수 계산 대상선박 등)** ① 법 제4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별표 20의2에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으로서 외국에 선박을 매각하거나 외국에서 수리·폐선 등을 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은 제외한다.
- ② 법 제41조의5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란 제3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③ 법 제41조의5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란 선박을 개조하는 목적이 선박의 사용연한을 실질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개조를 말한다.
 - ④ 법 제41조의5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이란 각각 별표 20의5 제1호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을 말한다.
 - ⑤ 법 제41조의5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란 선박의 기관출력, 선박의 속도, 연료 소비량 등의 변경으로 선박에너지효율지수가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선박의 개조를 말한다.
 - ⑥ 법 제41조의5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별표 20의5 제2호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 적용대상 선박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 9. 1.]

제30조의7(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계산 대상선박 등) ① 법 제41조의6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별표 20의6 제1호에 따른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계산 대상선박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6제2항에서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허용값을 초과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가 별표 20의6 제2호에 따른 선박운항탄소집약도 허용값을 초과하여 별표 20의7에 따른 선박운항탄소집약도 등급체계 중 E등급을 받은 경우
2.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가 별표 20의6 제2호에 따른 선박운항탄소집약도 허용값을 초과하여 별표 20의7에 따른 선박운항탄소집약도 등급체계 중 D등급을 3년 연속으로 받은 경우

③ 법 제41조의6제2항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개선계획을 별표 20의4에 따라 수립하고, 그 개선계획이 포함된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에 대한 검사를 법 제41조의6제1항에 따른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계산결과의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1.]

제31조(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 제거 업체 등의 지정) ①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제거하는 업체 또는 단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7서식의 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업체(단체)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오존층파괴물질 회수설비의 보유 현황과 각 회수설비의 제원 및 작동지침서
2. 오존층파괴물질을 저장할 수 있는 수용시설의 보유 현황

② 법 제42조제3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한 업체 또는 단체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8서식의 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업체(단체)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업체(단체)로 지정된 자가 그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지정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24.]

제31조의2(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 ①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으로 공급된 오존층파괴물질에 관한 사항
2.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의 충전에 관한 사항

3. 오존층파괴물질의 대기 배출에 관한 사항
4. 오존층파괴물질의 육상 수용시설로의 이송에 관한 사항
5.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의 수리나 정비 내역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는 별지 제5호의9서식과 같다.<개정 2020. 12. 24.>
[본조신설 2011. 12. 23.]

제32조(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①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디젤기관”이란 선박에 설치되는 출력 13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디젤기관(교체·추가·개조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②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시기 및 적용방법은 별표 21의2와 같다.

③ 법 제43조제4항에서 “디젤기관의 운전상태, 선박의 위치 및 일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23. 9. 1.>

1. 디젤기관의 운전 또는 정지 여부
2. 별표 21의2에서 정하는 기준이 적용되는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배출기준 등급
3. 디젤기관의 운전상태가 변경된 일시 및 해당 선박의 위치

[전문개정 2011. 12. 23.]

제33조(질소산화물 배출방지용 배기가스정화장치) 법 제43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0 제2호에 따른 질소산화물배출방지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기술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제34조(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 등) ①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0 제3호에 따른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기술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20. 11. 19.>

②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황산화물 배출제한 기준량”이란 배기가스 중 이산화황(ppm) 배출량 대비 이산화탄소(부피백분율) 배출량의 비율이 4.3[4.3 SO₂(ppm)/CO₂(%, v/v)]인 것을 말한다.<개정 2011. 12. 23., 2013. 3. 24., 2019. 2. 13., 2020. 11. 19.>

③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황함유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연료유(이하 “부적합 연료유”라 한다)의 사용을 인정받으려는 선박의 소유자는 연료유를 공급받으려는 항만에 입항하기 3일 전까지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별지 제5호의10서식의 부적합 연료유 사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0. 12. 24.>

④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가 기관일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0. 11. 19., 2020. 12. 24.>

1. 법 제44조제3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연료유의 종류 및 연료유의 교환이 완료된 날짜·시간 및 장소

나. 연료유탱크에 남아 있는 연료유(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의 양

다. 연료유의 황함유량

2. 법 제44조제3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기가스정화장치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날짜·시간·장소 및 고장 사항

나. 가목에 따른 고장 사항의 수리·대체 등 조치 내용

3. 법 제44조제3항제3호의 경우: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연료유를 공급받은 날짜·장소·수급량 및 해당 연료유의 황함유량

⑤ 법 제4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사용 중인 연료유의 견본채취 장소 및 견본채취의 기준은 별표 21의3과 같다.<신설 2023. 9. 1.>

⑥ 법 제44조제6항 단서에서 “특정 기관이 설치된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신설 2023. 9. 1., 2025. 8. 12.>

1. 저인화점 연료(인화점이 섭씨 60도 미만인 연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가스 연료(섭씨 37.8도에서 절대압력 0.28메가파스칼을 초과하는 증기압을 가지는 연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기관이 설치된 선박

2.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

제35조(연료유의 공급) ① 영 제43조제1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첨가제 또는 화학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첨가제 또는 화학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1. 선박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기계의 성능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첨가제 또는 화학폐기물

2. 인체에 유해한 첨가제 또는 화학폐기물

3.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첨가제 또는 화학폐기물

② 법 제45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소형의 선박”이란 총톤수 400톤 미만의 선박 및 합계출력 130킬로와트 미만의 내연기관이 설치된 부선을 말한다.<개정 2008. 3. 14., 2013. 3. 24.>

③ 법 제45조제4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연료유 견본을 보관해야 한다.<신설 2020. 11. 19.>

1.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정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 3개월

2.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제1호 외의 선박: 6개월

④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연료유공급서의 양식은 별표 22와 같고, 연료유 견본의 관리 및 증명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표 23과 같다.<개정 2020. 11. 19.>

⑤ 법 제45조에 따라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받은 선박의 선장은 연료유의 성분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료유 분석기관에 성분분석을 의뢰하거나 선박급유업자에게 성분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11. 19.>

제36조(선박 안에서의 소각)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소각설비”란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은 선내 소각기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5. 1. 8.>

② 법 제46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이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물질 외의 물질을 말하며,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별표 24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③ 법 제46조제3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이란 선박의 항해 중에 발생하는 유성찌꺼기 및 하수찌꺼기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1. 12. 23., 2013. 3. 24.>

④ 법 제46조제3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이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2. 「어촌·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
3. 강과 바다가 만나는 강어귀 구역의 해역

⑤ 법 제46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0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선내 소각기의 기술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제37조(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설치대상 물질 등) ① 법 제47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25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②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증기배출제어장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1. 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전체 명세서
2. 처리용량의 정성적 분석서(최대처리용량과 터미널 네트워크 상의 최대 수용량, 비정상상태의 경보 및 자동제어기능과 손상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전체 배치도
4. 제관 계통도(재질 및 치수가 기재되어야 한다)
5. 중요 부품 상세도
6. 전기 계통도 및 제어 계통도
7. 안전 및 보호장치
8. 성능시험계획서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장치가 별표 26의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유증기배출제어장치 안전적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⑤ 유증기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법 제47조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기의 작동상태와 주기적 점검결과 및 별표 26에 따른 안전설비와 경보장치의 작동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1. 화물유증기관 차단밸브
2. 과부압 방지장치
3. 블로워, 팬, 압축기, 펌프 및 그 원동기
4. 데토네이션 어레스트 및 플레임 어레스트
5. 프로세스 용기
6. 소각기
7. 방폭기기
8.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중요기기로 정하여 고시한 부품

제37조의2(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의 검인 등)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원유를 운송하는 유조선에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물을 싣고 내리거나 항해 중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
2. 원유세정 작업 중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관리계획
3.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관리를 위한 책임자에 관한 사항

③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의 검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원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선장 및 직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된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 및 영어로 된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8., 2015. 1. 8.>

④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검인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에 별표 17에 따른 검인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 1. 8.>

[본조신설 2011. 12. 23.]

제38조(배출규제의 적용제외) 법 제48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1. 해저광물의 탐사 및 발굴 작업에만 사용되는 디젤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2. 해저광물의 탐사 및 발굴 작업 과정에서 그 해저광물로부터 발생하거나 그 해저광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제39조(정기검사)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설비, 선체 및 화물창(이하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이라 한다)의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설비등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2019. 2. 13., 2020. 11. 19., 2023. 9. 1.>

1.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유조선 및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 외의 선박은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자목부터 카목까지의 서류에 한정한다)
 - 가.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제조명세서 및 취급설명서
 - 나.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구조 및 배치도면
 - 다.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검정합격증명서, 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 및 황산화물 배출적합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해당되는 선박에 한정한다)
 - 라. 선박의 구조도면
 - 마. 화물창의 용량에 관한 계산서
 - 바. 분리평형수탱크의 용량에 관한 계산서
 - 사. 선박평형수용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중 유량계 및 선속계의 성능시험성적서(유조선의 경우로 한정한다)
 - 아. 화물을 적재할 때의 복원성 및 선박이 손상될 때의 복원성에 관한 자료(1979년 12월 31일 후에 인도된 선박으로서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과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의 경우로 한정한다)
 - 자. 질소산화물배출기록
 - 차. 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이 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배기가스정화장치(이하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라 한다)의 기술 매뉴얼(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증명서, 형식 및 운전 특성 등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 기록부(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작동 상태 및 유지보수 이력을 기록한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가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 카. 별표 3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 안내표시판(안내표시판 부착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 및 폐기물관리계획서(해당되는 선박의 경우로 한정한다)
2. 제1호 외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 가.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또는 협약검사증서
 - 나.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자목부터 카목까지의 서류(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신설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는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을 선박에 최초로 설치하여 항해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항해에 사용하기 전에 받아야 하고,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내에 받아야 한다.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추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5. 1. 8.>
 -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정기검사를 받은 선박 소유자에 대하여 그 기간만료 전에 새로운 증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검사 후 장기간 항해, 조업 등의 사유로 유효기간의 만료 후에 해당 선박에 비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

검사 당시에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에 정기검사를 받은 사실을 기재하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5개월의 범위에서 선박에 갖추어두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3. 14., 2015. 1. 8.>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표 7에 따라 선박에 설치하여야 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 중 일부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5. 1. 8.>

제40조(중간검사)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설비등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2019. 2. 13., 2020. 11. 19.>

1.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또는 협약검사증서
2. 제3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자목부터 카목까지의 서류(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신설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중간검사의 세부종류 및 그 검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중간검사 : 배관·밸브 및 콕(이하 “배관등”이라 한다)의 위치 확인과 압력시험을 제외한 검사
2. 제2종 중간검사 : 작동시험

③ 제2항에 따른 중간검사의 시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총톤수 2톤 미만인 선박에 대해서는 중간검사를 생략한다.<개정 2008. 10. 31., 2019. 9. 11.>

| 구분 | 종류 | 검사시기 |
|---|----------|---|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1) 총톤수 50톤 미만의 유조선
2) 여객선을 제외한 총톤수 100톤 미만의 유조선 외의 선박 | 제1종 중간검사 | 정기검사 후 2번째 검사기준일 전 3개월부터 3번째 검사기준일 후 3개월까지 |
| 나. 가목 외의 선박 | 제1종 중간검사 | 정기검사 후 2번째 또는 3번째 검사기준일 전 후 3개월 이내 |
| | 제2종 중간검사 | 검사기준일 전 후 3개월 이내(다만, 정기검사 또는 제1종 중간검사를 받는 연도는 제외한다) |

④ 선박소유자가 제1종 중간검사 또는 제2종 중간검사에 갈음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1종 중간검사 또는 제2종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고, 제2종 중간검사에 갈음하여 제1종 중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2종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외수역(대한민국의 수역 외의 수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장기간 항해·조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간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자가 중간검사의 연기를 신청할 경우 중간검사의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검사의 연기신청 및 신청의 처리 등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를 준용한다.<개정 2008. 3. 14., 2015. 1. 8.>

⑥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표 7에 따라 해당선박에 설치하여야 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 중 일부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5. 1. 8.>

제41조(임시검사) ①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1.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 개조 또는 수리하는 경우. 다만, 해당 설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분리평형수탱크 또는 화물창의 구조, 용량, 배치, 배관 등을 변경, 교체 또는 개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설비등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5. 1. 8., 2019. 2. 13.>

1.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또는 협약검사증서

2. 제3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자목 및 차목의 서류(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신설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에 갈음하여 정기검사, 제1종 중간검사 또는 제2종 중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표 7에 따라 해당선박에 설치하여야 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 중 일부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5. 1. 8.>

제42조 삭제 <2014. 12. 29.>

제43조(임시항해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대한민국선박을 외국인 또는 외국정부에 양도할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려는 경우

2. 선박의 개조, 해체, 검사, 검정 또는 톤수 측정을 받을 장소로 항해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시항해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시항해검사 신청서에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5. 1. 8.>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임시항해검사에 합격한 선박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5. 1. 8.>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표 7에 따라 선박에 설치하여야 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 중 일부 설비의 설치를 면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임시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5. 1. 8.>

제44조(방오시스템검사) ① 법 제5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선박”이란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②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방오시스템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방오시스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5. 1. 8.>

1. 방오시스템 형식승인증서 또는 검정합격증명서
2. 방오시스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자료
3. 방오시스템의 구성성분과 액체화학품분류번호(CAS No.)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방오시스템검사의 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27의 검사방법에 따라 별표 28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5. 1. 8.>
-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방오시스템검사에 합격한 선박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방오시스템검사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5. 1. 8.>

제45조(임시방오시스템검사) ① 제44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는 방오시스템이 변경 또는 교체되는 경우(방오도료로 도장된 선체가 수리되는 경우에는 방오도료로 도장된 선체 면적의 25퍼센트 이상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임시방오시스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방오시스템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방오시스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5. 1. 8.>

1. 방오시스템검사증서
2. 방오시스템 형식승인증서 또는 검정합격증명서
3. 방오시스템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자료
4. 방오시스템의 구성성분과 액체화학품분류번호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임시방오시스템검사의 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4조 제3항의 기술기준 및 검사방법에 따라 적합한지 검사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5. 1. 8.>

제46조(예비검사 등) ① 법 제54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대기오염방지설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9. 2. 13.>

1.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디젤기관(이하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이라 한다)
2.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
-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예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5. 1. 8., 2019. 2. 13., 2023. 9. 1.>

1.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의 경우

가.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의 명세서

나.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의 구조 도면

다. 표본기관(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의 표본이 되는 기관을 말한다)이 적용되는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의 범위 및 선정기준

라. 질소산화물배출 관련 기록부(질소산화물배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부품의 설정방법 등 기술적 변수에 대한 기록을 말하며, 그 시험보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경우

가.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명세서

나.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구조 도면

다.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작동설명서, 기술 매뉴얼 및 선상 모니터링 매뉴얼(배기가스의 황산화물 배출수치 감지기의 설치 위치, 보수 및 보정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라. 황산화물 배출 적합 계획서(연료유 연소장치의 목록과 배출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장치가 운전됨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마.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 기록부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설비가 별표 20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5. 1. 8., 2019. 2. 13.>

④ 법 제54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예비검사증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서를 말한다.<개정 2019. 2. 13.>

1.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의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

2.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경우: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황산화물 배출적합증서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예비검사를 받은 대기오염방지설비에 대하여는 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또는 임시항해검사를 최초로 실시하는 때에 예비검사와 관련된 사항의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 3. 14., 2015. 1. 8.>

⑥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예비검사의 검사사항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개정 2019. 2. 13.>

1.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의 경우

가. 제2항제1호에 따른 서류의 사전 검토 및 승인

나. 별표 20 제1호의 기술기준에 따른 시험

2.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경우

가. 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의 사전 검토 및 승인

나. 별표 20 제3호의 기술기준에 따른 시험

⑦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 또는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가 외국정부의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6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의 검사사항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검사사항의 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 5. 15., 2015. 1. 8., 2019. 2. 13.>

1.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의 경우: 외국정부가 승인 및 발급한 질소산화물배출 관련 기록부 및 검사증서
2.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경우: 외국정부가 승인 및 발급한 황산화물 배출적합증서

제46조의2(에너지효율검사) ①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이하 “에너지효율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선박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해당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 9. 1.>

1.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 건조 또는 개조에 착수하기 전
 2.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선박: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를 선박에 비치한 때
 3. 법 제41조의5제1항에 따른 선박: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중간검사를 신청한 때
- ② 제1항에 따라 에너지효율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에너지효율검사 신청서에 별표 28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2. 13., 2023. 9. 1.>
- ③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의 검사사항 및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3. 9. 1.>

1.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검사할 것
 - 가.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검증

- 1) 선박의 설계단계에서 선박의 에너지효율 관련 기록부를 예비검증할 것
- 2) 해상 시운전단계에서 선박의 에너지효율 관련 기록부를 최종검증할 것
-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방법을 준수할 것

나.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만족 여부

다.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여부

2.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선박: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여부를 검사할 것
3. 법 제41조의5제1항에 따른 선박: 별표 20의5 제1호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의 만족 여부를 검사할 것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에너지효율검사에 합격한 선박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에너지효율검사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13.>

[본조신설 2013. 5. 15.]

제47조(검사의 준비 등) ① 법 제47조 및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29의 기준에 따라 검사 준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5.>

② 법 제49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 및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자나 그의 대리인은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선박검사 등을 하는 현장에 함께 참여하고, 선박검사 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선박검사 등에 참여하여야 하는 자가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선박검사 등에 참여한 자가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박검사 등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④ 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박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도면에 대하여 미리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면 승인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1. 해양오염방지설비를 최초로 설치하는 때
2.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선체구조를 갖추려는 때 또는 그 구조를 변경하려는 때
3.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화물창을 갖추려는 때 또는 그 구조를 변경하려는 때
4. 제41조에 따른 임시검사에 해당하는 때

제48조(협약검사증서의 발급)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협약검사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제39조, 제40조,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사신청서,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방오시스템 검사신청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협약검사증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당 선박의 해양오염방지설비등 또는 방오시스템이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요건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협약검사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2023. 9. 1.>

1. 위험화학품산적운송선

가. 1986년 7월 1일 이후에 건조 또는 개조된 위험화학품산적운송선으로서 국제산적화학물 코드에 규정된 물질을 운송하는 선박 : 별지 제22호서식의 국제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 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유해액체물질의 산적운송을 위한 국제오염방지증서

나. 1986년 6월 30일 이전에 건조 또는 개조된 선박으로서 선박소유자가 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선박 : 별지 제24호서식의 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

2.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 및 총톤수 400톤 이상의 유조선 외의 선박 : 별지 제25호서식의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

3. 삭제 <2014. 12. 29.>

4. 국제협약 부속서 4 제2규칙에 따른 선박 : 별지 제28호서식의 국제오수오염방지증서

5. 국제협약 부속서 6 제5규칙에 따른 선박 : 별지 제29호서식의 국제대기오염방지증서

6. 국제협약 부속서 6 제13규칙에 따른 선박 : 별지 제30호서식의 국제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협약검사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선박이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은 무인 부선으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선박인 경우에는 제2항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협약검사증서를 갈음하여 별지 제25호의2서식·별지 제28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면제증서를 발급해야 한다.<신설 2023. 9. 1.>

1. 기계적 수단으로 추진되지 않는 선박
2. 기름이나 유성찌꺼기를 운반하거나 저장하지 않는 선박
3. 오수저장 장치나 배기가스 배출장치가 없는 선박
4. 사람이나 살아있는 동물이 승선하지 않는 선박

제49조(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의 유효기간 연장)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방오시스템검사증서를 제외하며, 이하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이라 한다)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선박이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연장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어장에서 조업 중 또는 성어기에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선이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는 등의 사유로 새로운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을 선박에 갖추어둘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개월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연장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 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5. 1. 8.>

④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영사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 유효기간연장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3. 9. 1.>

제50조(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의 유효기간 기산) 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의 유효기간이 시작되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1.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와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3개월 전에 정기검사가 완료된 경우 : 검사가 완료된 날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정기검사가 완료된 경우 :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다만, 선박의 수리·계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유효기간 만료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정기검사가 완료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제51조(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 ① 법 제63조에 따라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물질 배출을 신고하는 자는 서면·구술·전화 또는 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하여야 하며, 그 신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오염사고의 발생일시·장소 및 원인
2. 배출된 오염물질의 추정량 및 확산상황과 응급조치상황
3. 사고선박 또는 시설의 명칭, 종류 및 규모
4. 해면상태 및 기상상태

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8.>

제52조(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좌초, 충돌, 파손, 침몰, 화재 등의 사고로 오염물질을 다른 선박이나 해양시설로 옮겨 싣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옮겨 싣는 조치
2. 제1호의 사고에 따른 선체 손상부위의 긴급수리, 선체의 예인·인양조치, 침수 또는 배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침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침몰된 후에 오염물질의 배출 우려가 있는 모든 부위를 막는 조치
4. 화재의 경우에는 진화작업으로 기관실 또는 화물창 등에 고인 폐수 등의 오염물질을 다른 선박이나 해양시설로 옮겨 싣는 조치 또는 배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배출감소 또는 확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6.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53조(선박에 비치할 자재·약제 비치기준 등)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방제·방지를 위한 자재 및 약제(이하 “자재·약제”라 한다)를 갖추어두어야 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4.>

1. 총톤수 100톤 이상의 유조선
2. 추진기관이 설치된 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유조선은 제외한다)

②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선박 안에 갖추어야 하는 자재·약제의 비치기준은 별표 30과 같다. 다만, 유처리제·유흡착제 또는 유겔화제(기름을 굳게 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기준량의 10퍼센트 이상을 갖추어두고 나머지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개정 2021. 6. 30.>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보관시설에 유처리제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선박에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④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방제선등을 배치·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배치·설치를 위탁한 경우에는 법 제66조에 따른 자재·약제 등을 갖추어둔 것으로 본다.

⑤ 해역관리청 및 선박의 소유자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보관시설에 갖추어두어야 하는 자재·약제의 최소 비치기준에 관하여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를 준용한다.

제54조(방제선등의 배치해역) ① 법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가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이하 “방제선등”이라 한다)를 배치하여야 하는 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해역에서 기름이 배출되는 경우 3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4., 2012. 1. 6., 2018. 5. 1., 2024. 2. 5.>

1. 「해상교통안전법」 제7조에 따른 교통안전 특정해역
2.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중 다음 각 목의 항만

- 가. 인천항
- 나. 평택·당진항
- 다. 대산항
- 라. 군산항
- 마. 목포항
- 바. 여수항
- 사. 광양항
- 아. 마산항
- 자. 부산항
- 차. 울산항
- 카. 포항항
- 타. 동해·묵호항
- 파. 제주항

②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방제선등을 공동으로 배치·설치한 자와 설치·배치를 위탁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증거서류를 해당 선박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공동배치를 한 자 : 배치한 방제선등의 목록 및 제원
2. 설치·배치를 위탁한 자
 - 가. 위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
 - 나. 수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
 - 다. 수탁기간
 - 라.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통신방법

제55조(형식승인대상설비 등) ① 법 제110조제3항 본문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형식승인대상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5. 15.>

1. 기름여과장치

2. 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
3. 유분농도계
4.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5. 유수경계면검출기
6. 화물창세정기
7. 유량계
8. 생물분해식·전기분해식 또는 소각식 분뇨처리장치
9. 분뇨마쇄소독장치
10. 선내 소각기
11. 유화기(Homogenizer)
12. 삭제<2017. 1. 2.>
13. 방오시스템

② 법 제110조제3항 본문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형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3. 5. 15., 2015. 1. 8.>

1. 제56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합격증명서
2. 설비 제조시설의 제조명세서
3. 수입신고서 사본(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법 제110조제3항 본문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 2서식의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4. 6. 25.>

1. 제56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합격증명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 법 제1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형식승인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 5. 15., 2015. 1. 8., 2024. 6. 25.>

1. 주요 제원에 관한 서류
2. 설비의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3. 수입신고서 사본(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시험·연구 또는 개발 계획서

제56조(성능시험) ① 법 제110조제5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성능시험신청서에 설비의 제조명세서, 구조도면, 작동설명서를 첨부(형식승인사항의 변경을 위한 성능시험인 경우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을 첨부한다)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2024. 6. 25.>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설비가 이 규칙에 따른 기술기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34호서식의

성능시험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0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형식승인 대상설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 상의 외관검사만으로 성능시험합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5. 1. 8.>

1. 제품의 주요구조물이 동등한 재료·부품을 사용하여 제작·제조된 것
2. 제품의 구조가 동등한 형식이거나 용량의 차이에 따라 크기 또는 무게가 다른 것
3. 동등한 오염방지처리방식을 채택한 것
4. 같은 사업장에서 제조된 것

제57조(형식승인증서의 발급)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10조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을 한 때에는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하여 별지 제35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2018. 5. 1.>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명칭, 제작사, 형식, 형식승인번호 등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형식승인을 한 내용을 변경승인하거나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2018. 5. 1.>

제58조(검정) ① 법 제110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는 법 제110조제6항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검정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② 제1항에 따른 검정의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형식승인대상설비를 검정한 결과 제2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37호서식의 검정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해당 설비에 별표 31에 따른 검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제59조(외국에서 선박에 설치한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인정)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10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하여 형식승인, 성능시험 또는 검정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5. 1. 8., 2024. 6. 25.>

1. 협약당사국이 형식승인을 한 형식승인대상설비로서 외국에서 도입, 건조 또는 수리된 선박에 설치한 형식승인대상설비
2. 선박에 설치한 형식승인대상설비로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지만 협약당사국이 형식승인을 한 것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설비
3. 국제협약에서 형식승인을 요구하지 않는 형식승인대상설비 중 제56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설비로서 외국에서 도입, 건조 또는 수리된 선박에 설치한 형식승인대상설비

제60조(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110조제9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32와 같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을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의 총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 3. 14., 2015. 1. 8.>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5. 1. 8.>

제60조의2(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검사 등) ① 법 제110조제1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종류의 형식승인대상설비 다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함을 말한다.

1. 형식승인대상설비가 법 제110조제5항에 따른 성능시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형식승인대상설비가 법 제110조제6항에 따른 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해당 형식승인대상설비와 동일한 형식과 모델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같은 항에 따른 보완 또는 교환을 명해야 한다. 이 경우 형식승인대상설비의 결함이 특정 부품으로 인한 것이라면 결함 발생의 원인이 된 부품에 한정하여 보완 또는 교환을 명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2항에 따른 보완 또는 교환 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보완 또는 교환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110조제13항에 따른 공표에 포함되어야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0조제1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 형식승인대상설비

2. 법 제110조제1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내용

3. 해당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중대한 결함 사실

4.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대표자의 이름 및 사업장 소재지

[본조신설 2024. 6. 25.]

[종전 제60조의2는 제60조의3으로 이동 <2024. 6. 25.>]

제60조의3(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법 제110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법 제110조의3제2항에 따라 별지 제37호의2서식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2. 제5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의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

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8. 5. 1.]

[제60조의2에서 이동 <2024. 6. 25.>]

제60조의4 삭제 <2018. 5. 1.>

제60조의5 삭제 <2018. 5. 1.>

제61조(협정의 체결 신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은 영 제8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과 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4. 11. 19., 2017. 7. 28., 2019. 8. 20., 2021. 6. 30.>

1.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임원의 성명
3. 선박검사원의 수
4. 정관 및 예산
5. 등록 선박 수 및 검사의 기준
6. 수수료의 기준
7. 대행계획
8. 영 제88조제3항에 따른 협정포함사항

제62조(성능시험 등의 대행) ① 법 제112조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 검정 및 인정 업무 대행자 지정기준은 별표 33과 같다. <개정 2011. 12. 23.>

② 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 검정 및 인정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성능시험·검정및인정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초본에 대하여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1. 4. 11., 2011. 12. 23., 2013. 3. 24.>

1. 삭제<2011. 4. 11.>
2.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3. 대행업무를 담당할 인력, 시설 및 장비 현황

4. 사업계획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성능시험, 검정 또는 인정에 관한 업무의 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성능시험·검정 및 인정대행자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1. 12. 23., 2013. 3. 24.>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변경지정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3. 14., 2013. 3. 24.>

1. 업무대행자의 상호, 대표자 및 소재지

2. 지정번호

3. 지정연월일

4. 검사대행분야 및 대상설비

5. 지정조건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1. 12. 23.]

제63조(업무대행 협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제62조에 따라 업무대행자 지정을 받은 자의 법 제113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의 협정 또는 지정의 취소기준은 별표 34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3. 3. 24.>

제63조의2(검사 등 신청 서식)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의 검인,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검인, 법 제41조의3제2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검사, 법 제41조의4제3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검증,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유증기 배출제어장치의 검사,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의 검인,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중간검사, 이 규칙 제40조제5항에 따른 중간검사 연기,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방오시스템검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시방오시스템검사,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예비검사,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법 제110조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한 성능시험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한 검정을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27조의2제3항, 제30조의4제3항, 제30조의5제2항, 제37조제2항, 제37조의2제3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 및 제5항, 제41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6조의2제2항, 제49조제3항, 제56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의 서식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4.>

[본조신설 2020. 11. 19.]

제63조의3(전자증서의 발급) 제30조의4제4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 제30조의5제4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 제39조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 및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추록, 제43조제3항에 따른 임시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 제44조제4항에 따른 방오시스템검사증서,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황산화물 배출적합증서, 제46조의2제4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증서, 제48조제2항에 따른 협약검사증서, 제56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합격증명서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검정합격증명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4.>

[본조신설 2020. 11. 19.]

제64조(출입검사 항목) ①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선박의 하역과정에 대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의 대상선박·시설별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30.>

1. 유조선의 하역과정인 경우

- 가. 해당 선박의 정박상황의 적합 여부
- 나. 화물유 유출의 가능성이 있는 밸브의 폐쇄 여부
- 다. 상갑판상의 모든 배출구의 폐쇄 여부
- 라. 화물유 이송호스의 연결부분 중 화물유 유출의 우려가 있는 부분의 기름받이 설치여부
- 마. 화물유 유출사고에 대비한 긴급보고체제의 유지 및 유출된 화물유의 신속한 제거를 위한 사전준비 여부
- 바. 화물유 유출사고에 대비한 오염방지관리인의 하역과정에 참여 여부
- 사. 화물유 유출에 대비한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Oil Fence) 설치 여부
- 아. 화물유 작업관계자간의 긴밀한 통신망 구성 및 통신장비의 사전점검 여부
- 자. 화물유 이송호스, 그 밖의 장비에 대한 사전점검 여부

2. 유해액체물질 산적운반선의 하역과정인 경우

- 가. 화물창, 화물이송펌프, 배관장치가 비어 있는지 여부
- 나.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에 따라 유해액체물질을 예비세정하였는지의 여부
- 다. 예비세정과정에서 생기는 화물창세정수를 육상수용시설에 이송하였는지의 여부

3. 유조선 및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 외의 선박의 하역과정인 경우

- 가. 갑판상의 기름배출 가능개소의 배출구 폐쇄 여부
- 나.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과정에서의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여부
- 다. 유출사고에 대비한 긴급보고체제의 유지 및 신속한 조치를 위한 사전준비 여부

4. 선박급유업의 시설인 경우

가. 선박급유 시설의 사전점검 여부

나. 선박급유 시설의 오염 및 화재 예방조치 여부

②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선박의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사 여부 등에 대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 확인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5. 15., 2018. 5. 1., 2026. 6. 15.>

1.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비치 여부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비치 여부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보유 여부
 4. 법 제37조에 따른 오염물질의 수거 확인
 - 4의2.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여부
 5.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았는지 여부의 확인
 6.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방오시스템검사증서의 비치 여부 확인
 - 6의2.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증서의 비치 여부
 7. 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의 비치 여부 확인
 8. 법 제66조에 따른 방제자재 및 약제의 선내비치 또는 육상보관 지정 확인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비치된 서류를 점검하여 실제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설비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제65조(출입검사·보고 사항)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에게 오염사고 예방·대응 관련 서류 및 점검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제66조(출입검사 후 조치)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출입검사 결과 선박이 해양오염방지조치에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4. 11. 19., 2015. 1. 8., 2017. 7. 28.>

제67조(업무전산망의 구성 등) 법 제115조제6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업무 편의 및 민원인의 편익을 위하여 출입검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4. 11. 19., 2015. 1. 8., 2017. 7. 28.>

제68조(수수료 등) ① 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35와 같다. <개정 2011. 12. 23., 2013. 5. 15., 2018. 5. 1., 2019. 2. 13.>

1. 법 제2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률 승인
- 1의2.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변경검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 및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의 검인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유증기배출제어장치검사 및 증서발급

3. 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검사 및 증서발급

4. 법 제53조에 따른 방오시스템검사 및 증서발급

5. 법 제54조에 따른 예비검사 및 증서발급

5의2. 법 제54조의2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 및 증서발급

6. 법 제110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 성능시험 및 검정

7. 삭제 <2019. 2. 13.>

② 국외에서 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 5. 1.>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납부하는 경우: 수입인지, 전자화폐,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2.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납부하는 경우: 현금, 전자화폐,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④ 삭제 <2018. 5. 1.>

제69조 삭제 <2017. 1. 2.>

부칙 <제402호, 2008. 1.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 및 제45조는 「선박 유해방오 시스템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형 디젤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130킬로와트 이상 294킬로와트 미만의 소형 디젤기관에 대하여는 2011년 6월 30일까지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질소산화물 배출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7. 1.>

제3조 (유증기수집제어장치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9 제4호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질규제항만으로 지정된 항만에서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유증기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한 날(이하 이 조에서 “설치일”이라 한다) 이후에 인도되는 선박(해당 해양시설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함유한 물질을 싣는 선박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설치일 전에 이미 운항하고 있던 선박에 대하여는 설치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선박의 구조기준 및 복원성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9부터 별표 14까지의 규정(별표 10 중 이중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이 규칙 시행 후 건조계약이 이루어지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분뇨오염방지설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993년 5월 2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분뇨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31.>

1. 선박검사증서 상의 최대승선인원이 50명 미만인 선박

2. 선박검사증서 상의 최대승선인원이 50명 미만인 어선

3. 소속 부대의 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이 정한 승선인원이 50명 미만인 군함과 경찰용 선박

②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993년 5월 2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으로서 선박의 구조상 분뇨처리장치, 분뇨마쇄소독장치 또는 분뇨저장탱크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인정하는 선박은 분뇨처리장치, 분뇨마쇄소독장치 또는 분뇨저장탱크에 갈음하여 이동식저장탱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31.>

③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분뇨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31.>

1. 선박검사증서 상의 최대승선인원이 20명 미만인 어선

2. 소속 부대의 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이 정한 승선인원이 30명 미만인 군함과 경찰용 선박

④ 제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인도된 선박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거하는 날부터 제2조제16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배출물질의 배출해역별 처리기준 및 방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8. 10. 31.>

제6조 (기름여과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1993년 7월 6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으로서 종전의 농림수산부령 제1111호 및 건설교통부령 제995호 별표 1에 따른 제2종유수분리장치를 갖춘 총톤수 40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새로운 기름여과장치로 교체할 때까지 제15조제1항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종유수분리장치의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55조에 따른 기름여과장치의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유해액체물질배출방지설비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5 제4호에도 불구하고 1986년 6월 30일 이전에 건조된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 중 Y류물질을 운반하는 선박은 스트리핑잔류량을 0.3세제곱미터 이하로 처리하는 성능을 가진 스트리핑장치를 갖추어야 하고, Z류물질을 운반하는 선박은 스트리핑잔류량을 0.9세제곱미터 이하로 처리하는 성능을 가진 스트리핑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1993년 5월 2일 이전에 주요개조가 개시되는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상태평가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05년 4월 5일 전에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1에 따라 발급한 상태평가검사적합증서는 이 기준에 따라 발급한 상태평가검사적합증서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칙에 따라 발급받은 상태평가검사적합증서는 이 규칙에 따라 발급받은 상태평가검사적합증서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호,2008. 3. 14.>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호,2008. 10.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호,2009. 3. 26.>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호,2009. 7. 1.>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비고란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7호,2009. 12. 14.> (항만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2호 중 “ 「항만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정항만 ”을 “ 「항만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제3호에 따른 연안항 ”으로 한다.

⑥ 부터 ⑧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75호,2010. 8.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호, 2011. 3.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호, 2011. 4. 1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9호, 2011.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3 및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 배출규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젤기관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1의2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2011년 7월 1일 이후 건조된 선박에 설치되거나 제작된 출력 130kW[176PS] 초과 출력 294kW[400PS] 미만의 디젤기관과 2006년 6월 29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에 설치되거나 제작된 출력 294kW[400PS] 이상의 디젤기관은 제외한다.

1.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제3호카목 및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3호차목에 따라 선박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을 선박용으로 구조 변경하여 예비검사를 받은 디젤기관
2. 다른 선박에 사용되었던 디젤기관으로서 제1호 외의 디젤기관

제3조(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 기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질소산화물 기술코드(NOx Technical Code)에 따라 시험에 합격한 디젤기관은 별표 20의 개정규정에 따른 질소산화물 기술코드(NOx Technical Code 2008)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34호, 2012. 1. 6.>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1호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를 “「해사안전법」 제10조”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465호, 2012. 5. 18.> (선원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3항 후단 및 제37조의2제3항 후단 중 “ 「선원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 ” 를 각각 “ 「선원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 ” 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1호, 2013. 3. 24.>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1^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다목, 제3조제1항제5호, 제17조제1항, 제27조의4제4항제1호·제3호, 제37조제5항제8호, 제41조제1항제1호 단서, 제42조제6항, 제44조제1항, 제50조제2호 단서,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제58조제2항, 제59조제2호,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6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0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0조의5제1항·제2항,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6호, 제63조제2항, 제68조제4항, 별표 6 제1호마목, 같은 표 제4호나목 비고의 3), 별표 8 제5호가목 단서, 같은 표 제10호나목1) 단서, 같은 표 제11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별표 10 제5호 후단, 별표 12 제1호나목 단서, 같은 호 사목, 별표 21의2 제1호라목 전단·후단, 별표 29 제1호나목5) 및 6), 별표 33 제1호나목5) 및 8), 별표 35 제5호 비고의 가목, 같은 표 제6호 비고의 가목, 같은 표 제7호가목, 같은 표 제8호 나목 및 다목, 별지 제37호의2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37호의3서식, 별지 제37호의4서식, 별지 제37호의5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서명란 및 별지 제39호서식 중 “ 국토해양부장관 ” 을 각각 “ 해양수산부장관 ” 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

27조의2제2항, 제2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3항, 제31조,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7조제1항,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제1항·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의2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7호의5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38호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지 제37호의6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을 “해양수산부장관(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으로 한다.

1& 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26호, 2013. 5.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별표 1의3 및 별표 21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너지효율검사 신청시기에 대한 특례) 제46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건조 또는 개조에 착수한 선박은 2014년 5월 31일까지 에너지효율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조(분뇨오염방지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을 때까지 분뇨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63호,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호, 2014. 11. 19.>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경찰관서의 장”을 “경찰관서·해양경비안전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 및 제68조제4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66조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해양경찰청(방제과)”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⑧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123호, 2014.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예비검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4호, 2015. 1. 8.>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가목·나목,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7조의2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7조의2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4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8조제1항·제3항,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64조제3항, 제65조, 제66조, 제67조, 별표 2 제1호다목, 별표 4 제4호다목2), 별표 5 제4호마목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2), 같은 표 제5호나목1)다) 단서, 같은 호 라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호 자목2)라)(2) 전단, 같은 표 제6호사목, 같은 표 제8호나목 비고란1)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같은 란 1)다), 같은 란 2), 같은 호 라목 1)가), 같은 목 1)나)의 (1) 및 (2) 외의 부분, 같은 목 2)의 가) 및 나) 외의 부분, 같은 목 2)가), 같은 목 3)의 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3)가)·나)·라), 별표 16 제1호라목, 같은 표 제3호나목4), 별표 26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외의 부분 전단,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제3쪽

,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제2쪽, 제3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뒤쪽, 별지 제22호서식 제3쪽, 제7쪽, 제8쪽, 별지 제23호서식 제2쪽, 제6쪽, 별지 제24호 서식 제3쪽, 제7쪽, 제8쪽, 별지 제25호서식 제2쪽, 제10쪽, 제22쪽, 별지 제28호서식 제2쪽, 별지 제29호서식 제1쪽, 제9쪽, 별지 제30호서식 제1쪽, 제4쪽,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7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5호의2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3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제2쪽, 제3쪽, 별지 제22호서식 제3쪽, 제7쪽, 제8쪽, 별지 제23호서식 제2쪽, 제6쪽, 별지 제24호서식 제3쪽, 제7쪽, 제8쪽, 별지 제25호서식 제2쪽, 제10쪽, 제22쪽, 별지 제28호서식 제2쪽, 별지 제29호서식 제1쪽, 제9쪽, 별지 제30호서식 제1쪽, 제4쪽,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 중 “Administrator of the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를 각각 “Administrator of the Regional Maritime Affairs & Fisheries Office”로 한다.

④부터1(까지 생략

부칙 <제212호, 2016. 12.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호, 2017. 1. 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51호, 2017. 7. 28.>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호, 2018. 5.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호, 2019. 2.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성찌꺼기탱크 기술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2017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의 경우에는 별표 8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의 경우에는 별표 8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복원성 계산기기의 비치에 관한 적용례) 2016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날 또는 2021년 1월 1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별표 14 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소형선이중선저구조 기준에 관한 특례) 별표 10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하는 유조선으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춘 유조선의 경우에는 별표 13 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표 제1호가목2)에 따른 화물창바닥과 선저외판에서 수직으로 측정한 선저외판의 형선간의 거리의 최소값은 0.60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5조(폐기물 배출률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국제협약에 따라 폐기물의 배출률 승인을 받은 자는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기물의 배출률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366호, 2019. 8. 20.>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구비서류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제3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제2쪽 및 제3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각각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21호의3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4서식 제1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하고, 같은 서식 제4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8쪽 중 제3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하고, 같은 서식 8쪽 중 제7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하며, 같은 서식 8쪽 중 제8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제2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하고, 같은 서식 제6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8쪽 중 제3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하고, 같은 서식 8쪽 중 제7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하며, 같은 서식 8쪽 중 제8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21쪽 중 제2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하고, 같은 서식 21쪽 중 제10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하며, 같은 서식 21쪽 중 제21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제2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9쪽 중 제1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하고, 같은 서식 9쪽 중 제9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제1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하고, 같은 서식 제4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368호, 2019. 9.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항해선박에 대한 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의 교정에 관한 적용례)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별표 8 제6호다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국내항해 유조선에 대한 화물유 배관 격리설비에 관한 적용례)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유조선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별표 9 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444호, 2020. 1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처리 안내표시판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제1호카목, 같은 항 제2호나목 및 제4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51호, 2020. 1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국제협약 부속서 6에 따라 발급된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 및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는 각각 제30조의 4제4항의 개정규정 및 제30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 및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로 본다.

제3조(부적합 연료유 사용보고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국제협약 부속서 6에 따라 제출된 부적합 연료유 사용보고서는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로 본다.

부칙 <제486호, 2021. 6. 3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9호, 2021.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뇨마쇄소독장치에 대한 검사준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9 제4호의 정기검사란 나
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또는 임시항해검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양오염방지설
비 등에 대한 정기검사, 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처리기간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12호, 2023. 7. 6.>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를 “「수상레저기구
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③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620호, 2023. 9.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2호, 2024. 2. 5.>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1호 중 “「해사안전법」 제10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7조”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672호, 2024. 6.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3호,2025. 8.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0호,2025. 10. 31.> (정부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8호,2026. 6. 15.>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25. 8. 12.>

유해액체물질의 분류를 위한 세부기준 및 물질목록(제3조제2항 관련)

1. 유해액체물질의 분류를 위한 세부기준

아래 표와 같이 GESAMP(해양환경전문가그룹) 위험성 분석표에 반영된 것처럼 물질의 특성평가에 기초를 두고 물질에 오염범주를 배정한다.

| 규칙 | A1
생체축적 | A2
생물분해 | B1
극독성 | B2
만성적인
독성 | D3
장기적인
건강에
영향 | E2
해양생물 및 해저
서식지에 대한 영향 | 분류 |
|----|--|------------|-----------|------------------|-------------------------|-------------------------------|----|
| 1 | | | ≥5 | | | | X |
| 2 | ≥4 | | 4 | | | | |
| 3 | | NR | 4 | | | | |
| 4 | ≥4 | NR | | | CMRTNI | | |
| 5 | | | 4 | | | | Y |
| 6 | | | 3 | | | | |
| 7 | | | 2 | | | | |
| 8 | ≥4 | NR | | Not 0 | | | |
| 9 | | | | ≥1 | | | |
| 10 | | | | | | 무기물질이 아닌
경우 Fp · F 또는 S | |
| 11 | | | | | CMRTNI | | |
| 12 | 규칙 1부터 11까지 및 규칙 13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물질 | | | | | | Z |
| 13 | A1란에서 ≤2, A2란에서 R, D3란 공백, E2란에서 Fp · F 또는 S가
아님(무기물질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고, GESAMP 위험성 분석표의
다른 란에 “0”으로 식별된 모든 물질 | | | | | | OS |

비고

GESAMP 위험성 평가절차에 대한 범례는 다음과 같다.

| 수량
등급 | A
생체축적 및 생물분해 | | | B
수중 생물에 대한 독성 | |
|----------|---------------------------------------|----------------|---------------------------|-----------------------------------|--|
| | A1
생체축적 | | A2
생물분해 | B1
극독성
LC/EC/IC50
(mg/L) | B2
만성적인 독성
EC10 or
NOEC
(mg/L) |
| | Ala: log
Pow | Alb: BCF | | | |
| 0 | log <1,
log > ca.7
MW >
1000 | BCF 측정불가 | R:
생물분해
가 쉽게
됨 | AT >1000 | CT >1 |
| 1 | 1 ≤ log <2 | 1 ≤ BCF <10 | NR:
생물분해
가 쉽게
되지 | 100 < AT
≤1000 | 0.1 < CT ≤1 |
| 2 | 2 ≤ log <3 | 10 ≤ BCF <100 | | 10 < AT ≤100 | 0.01 < CT ≤0.1 |
| 3 | 3 ≤ log <4 | 100 ≤ BCF <500 | | 1 < AT ≤10 | 0.001 < CT ≤0.01 |

| | | | | | |
|---|-----------------------------|------------------------------|----|-----------------------------|------------------------|
| 4 | $4 \leq \log < 5$ | $500 \leq \text{BCF} < 4000$ | 없음 | $0.1 < \text{AT} \leq 1$ | $\text{CT} \leq 0.001$ |
| 5 | $5 \leq \log < \text{ca} 7$ | $\text{BCF} \geq 4000$ | | $0.01 < \text{AT} \leq 0.1$ | |
| 6 | | | | $\text{AT} \leq 0.01$ | |

| C
포유류에 유독한 영향 | | | | | |
|------------------|------------------------------|-------------------------------|------------------------------|------------------------------|---------------------------|
| 수량
등급 | C1
구강에 독성 | C2
피부에 독성 | C3
흡입시 독성 | | |
| | LD50/ATE
(mg/kg) | LD50/ATE
(mg/kg) | C3a | | C3b |
| | | | 증기/미스트
LC50/ATE
(mg/L) | 미스트만
LC50/ATE
(mg/L) | 증기만
LC50/ATE
(mg/L) |
| 0 | $\text{ATE} > 2000$ | $\text{ATE} > 2000$ | $\text{ATE} > 20$ | $\text{ATE} > 5$ | $\text{ATE} > 20$ |
| 1 | $300 < \text{ATE} \leq 2000$ | $1000 < \text{ATE} \leq 2000$ | $10 < \text{ATE} \leq 20$ | $1 < \text{ATE} \leq 5$ | $10 < \text{ATE} \leq 20$ |
| 2 | $50 < \text{ATE} \leq 300$ | $200 < \text{ATE} \leq 1000$ | $2 < \text{ATE} \leq 10$ | $0.5 < \text{ATE} \leq 1$ | $2 < \text{ATE} \leq 10$ |
| 3 | $5 < \text{ATE} \leq 50$ | $50 < \text{ATE} \leq 200$ | $0.5 < \text{ATE} \leq 2$ | $0.05 < \text{ATE} \leq 0.5$ | $0.5 < \text{ATE} \leq 2$ |
| 4 | $\text{ATE} \leq 5$ | $\text{ATE} \leq 50$ | $\text{ATE} \leq 0.5$ | $\text{ATE} \leq 0.05$ | $\text{ATE} \leq 0.5$ |

| D
자극, 부식 및 장기적인 건강에 영향 | | | |
|---------------------------|---|----------------|--|
| 수량
등급 | D1
피부 자극 및 부식 | D2
눈자극 및 부식 | D3
장기적인 건강에 영향 |
| 0 | 무자극성 | 무자극성 | C - 발암인자
M - 돌연변이
R - 생물번식에 독성
Ss - 피부에 과민성
Sr - 호흡계 과민성
A - 흡입위험
T - 대상기관 계통 손상
N - 신경 독성
I - 면역 독성 |
| 1 | 약간 자극성 | 약간 자극성 | |
| 2 | 자극성 | 자극성 | |
| 3 | 심각한 자극성 또는 부식성
3A 부식 (≤ 4 시간)
3B 부식 (≤ 1 시간)
3C 부식 (≤ 3 분) | 심각한 자극성 | |

| E
그 밖의 해양의 이용에 영향 | | | |
|----------------------|---------------------------|---|---------------------------|
| 수량
등급 | E1
가연성 인화점(°C) | E2
해양생물 및
해저서식지에 대한
영향 | E3
연안의 문화시설에
영향 |
| 0 | 불연성, 타지 않음 | Fp - 지속적으로 물
표면에 떠있는
물질
F - 물 표면에 떠있
는 물질 | 영향 없음
경고 없음 |
| 1 | 인화점 > 93 | | 약간 불쾌함
경고(문화시설 폐쇄 불필요) |
| 2 | $60 < \text{인화점} \leq 93$ | | 상당히 불쾌함 |

| | | | |
|---|---------------|--------------------------------------|-------------------|
| | | S - 가라앉는 물질 | 문화시설폐쇄 가능함 |
| 3 | 23 ≤ 인화점 ≤ 60 | G - 가스 | |
| 4 | 인화점 < 23 | E - 증발하는 물질
D - 용해되는 물질
및 그 조합 | 평상히 불패함
문화시설폐쇄 |

2. 유해액체물질의 목록

| 품명 | 오염분류 |
|---|------|
| 아세트산 | Z |
| Acetic acid | |
| 아세트산 무수물 | Z |
| Acetic anhydride | |
| 아세토클로르 | X |
| Acetochlor | |
| 아세톤 시아노히드린 | Y |
| Acetone cyanohydrin | |
| 아세토니트릴 | Z |
| Acetonitrile | |
| 아세토니트릴(저순도) | Y |
| Acetonitrile(Low purity grade) | |
| 대두, 옥수수 및 해바라기유 정제 유산혼합물 | Y |
| Acid oil mixture from soya bean, corn(maize) and sunflower oil refining | |
| 아크릴아미드용액(50% 이하) | Y |
| Acrylamide solution(50% or less) | |
| 아크릴산 | Y |
| Acrylic acid | |
| 포스 포 네이트기를 갖는 아크릴산/에 텐선폰산 공중 합체, 나트륨 염 용액 | Z |
| Acrylic acid/ethenesulphonic acid copolymer with phosphonate groups, sodium salt solution | |
| 아크릴로니트릴 | Y |
| Acrylonitrile | |
| 아크릴로니트릴-스티렌 공중합체와 폴리에테르 폴리올의 혼합물 | Y |
| Acrylonitrile-Styrene copolymer dispersion in polyether polyol | |
| 아디포니트릴 | Z |
| Adiponitrile | |
| 알라클로르(농도가 90% 이상) | X |
| Alachlor technical(90% or more) | |

| | |
|--|---|
| 알코올(C9-C11)폴리(2.5-9) 에톡실레이트 | Y |
| Alcohol (C9-C11) poly(2.5-9) ethoxylate | |
| 알코올(C6-C17)(2차)폴리(3-6)에톡실레이트 | Y |
| Alcohol (C6-C17)(secondary) poly(3-6) ethoxylates | |
| 알코올(C6-C17)(2차)폴리(7-12)에톡실레이트 | Y |
| Alcohol (C6-C17)(secondary) poly(7-12) ethoxylates | |
| 알코올(C10-C18)폴리(7) 에톡실레이트 | Y |
| Alcohol(C10-C18) poly(7) ethoxylate | |
| 알코올(C12-C16)폴리(1-6) 에톡실레이트 | Y |
| Alcohol(C12-C16) poly(1-6) ethoxylates | |
| 알코올(C12-C16)폴리(20+) 에톡실레이트 | Y |
| Alcohol(C12-C16) poly(20+) ethoxylates | |
| 알코올(C12-C16)폴리(7-19) 에톡실레이트 | Y |
| Alcohol(C12-C16) poly(7-19) ethoxylates | |
| 알코올(C13+) | Y |
| Alcohols(C13+) | |
| 알코올(C12+), 1차, 선형 | Y |
| Alcohols(C12+), primary, linear | |
| 알코올(C8-C11), 1차, 선형 및 본질적 선형 | Y |
| Alcohols(C8-C11), primary, linear and essentially linear | |
| 알코올(C12-C13), 1차, 선형 및 본질적 선형 | Y |
| Alcohols (C12-C13), primary, linear and essentially linear | |
| 알코올(C14-C18), 1차, 선형 및 본질적 선형 | Y |
| Alcohols(C14-C18), primary, linear and essentially linear | |
| 알칸(C6-C9) | X |
| Alkanes(C6-C9) | |
| 이소 및 시클로 알칸(C10-C11) | Y |
| Iso- and cyclo-alkanes(C10-C11) | |
| 이소 및 시클로 알칸(C12+) | Y |
| Iso- and cyclo-alkanes(C12+) | |
| n-알칸(C9-C11) | Y |
| n-Alkanes(C9-C11) | |
| n-알칸(C10-C20) | Y |
| n-Alkanes(C10 - C20) | |
| 알칼리 폴리에테르(C9-C20) | Y |
| Alkaryl polyethers(C9-C20) | |
| 알케노산, 폴리 하이드록시 에테르 붕산화 | Y |
| Alkenic acid, polyhydroxy ester borated | |

| | |
|---|---|
| 알케닐(C11+) 아마이드 | X |
| Alkenyl(C11+) amide | |
| 알케닐(C16-C20) 숙신산 무수물 | Z |
| Alkenyl(C16-C20) succinic anhydride | |
| 톨루엔 알킬 아크릴 레이트/비닐피리딘 공중합체 | Y |
| Alkyl acrylate/vinylpyridine copolymer in toluene | |
| 알킬라릴 포스페이트 혼합물(디페닐 톨릴 포스페이트 40%초과, 오르토 이성질체 0.02% 미만) | X |
| Alkylaryl phosphate mixtures(more than 40% Diphenyl tolyl phosphate, less than 0.02% ortho-isomers) | |
| 알킬화된(C4-C9) 간접 페놀 | Y |
| Alkylated(C4-C9) hindered phenols | |
| 알킬벤젠 알킬리단 알킬리덴 혼합물(각각 C12-C17) | Z |
| Alkylbenzene, alkylindane, alkylindene mixture(each C12-C17) | |
| 알킬 벤젠 증류 찌꺼기 | Y |
| Alkyl benzene distillation bottoms | |
| 알킬 벤젠 혼합물(50 % 이상의 톨루엔 함유) | Y |
| Alkylbenzene mixtures(Containing at least 50% of toluene) | |
| 알킬 벤젠 혼합물(나프탈렌 함유) | X |
| Alkylbenzenes mixtures(Containing naphthalene) | |
| 알킬(C3-C4) 벤젠 | Y |
| Alkyl(C3-C4) benzenes | |
| 알킬(C5-C8) 벤젠 | X |
| Alkyl(C5-C8) benzenes | |
| 알킬(C9+) 벤젠 | Y |
| Alkyl(C9+)benzenes | |
| 알킬(C11-C17) 벤젠 술폰익산 | Y |
| Alkyl(C11-C17) benzene sulphonic acid | |
| 알킬 벤젠 술폰익산, 나트륨염 용액 | Y |
| Alkylbenzene sulphonic acid, sodium salt solution | |
| 알킬/사이클로(C4-C5) 알코올 | Y |
| Alkyl/cyclo(C4-C5) alcohols | |
| 알킬(C10-C15, C12 리치) 페놀 폴리(4-12)에톡실레이트 | Y |
| Alkyl(C10-C15, C12 rich) phenol poly(4-12) ethoxylate | |
| 알킬(C12+) 디메틸아민 | X |
| Alkyl(C12+) dimethylamine | |
| 알킬 디티오카바메이트(C19-C35) | Y |
| Alkyl dithiocarbamate(C19-C35) | |

| | |
|--|---|
| 알칼디티오티아디졸(C6-C24) | Y |
| Alkyldithiothiadiazole(C6-C24) | |
| 알킬 에스테르 공중합체(C4-C20) | Y |
| Alkyl ester copolymer(C4-C20) | |
| 알킬(C7-C9) 질산염 | Y |
| Alkyl(C7-C9) nitrates | |
| 알킬(C8-C10)/(C12-C14):(40% 이하/60% 이상) 폴리글루코사이드 용액(55% 이하) | Y |
| Alkyl(C8-C10)/(C12-C14):(40% or less/60% or more) polyglucoside solution (55% or less) | |
| 알킬(C8-C10)/(C12-C14):(60% 이상/40% 이하) 폴리글루코사이드 용액(55% 이하) | Y |
| Alkyl(C8-C10)/(C12-C14):(60% or more/40% or less) polyglucoside solution(55% or less) | |
| 알킬(C7-C11)페놀폴리(4-12)에톡실레이트 | Y |
| Alkyl(C7-C11)phenol poly(4-12) ethoxylate | |
| 알킬(C8-C40) 페놀 설파이드 | Z |
| Alkyl(C8-C40) phenol sulphide | |
| 방향족화합물용제에 녹아있는 알킬(C8-C9) 페닐아민 | Y |
| Alkyl(C8-C9) phenylamine in aromatic solvents | |
| 알킬(C9-C15) 페닐 프로폭실레이트 | Z |
| Alkyl(C9-C15) phenyl propoxylate | |
| 알킬(C8-C10) 폴리글루코사이드 용액(65% 이하) | Y |
| Alkyl(C8-C10) polyglucoside solution(65% or less) | |
| 알킬(C8-C10)/(C12-C14):(50%/50%) 폴리글루코사이드 용액(55% 이하) | Y |
| Alkyl(C8-C10)/(C12-C14):(50%/50%) polyglucoside solution(55% or less) | |
| 알킬(C12-C14) 폴리글루코사이드 용액(55% 이하) | Y |
| Alkyl(C12-C14) polyglucoside solution(55% or less) | |
| 알킬(C12-C16)프로폭시아민 에톡실레이트 | X |
| Alkyl(C12-C16) propoxyamine ethoxylate | |
| 알킬(C10-C20, 포화 및 불포화된 것) 포스파이트 | Y |
| Alkyl(C10-C20, saturated and unsaturated) phosphite | |
| 페놀의 알킬 술폰산 | Y |
| Alkyl sulphononic acid ester of phenol | |
| 알킬(C18+) 톨루엔 | Y |
| Alkyl(C18+) toluenes | |
| 알킬(C18-C28) 톨루엔술폰산 | Y |
| Alkyl(C18-C28) toluenesulphonic acid | |
| 알킬(C18-C28) 톨루엔술폰산, 칼슘염, 붕산화 | Y |

| | |
|---|---|
| Alkyl(C18-C28) toluenesulphonic acid, calcium salts, borated | |
| 알킬(C18-C28) 톨루엔술폰산, 칼슘염, 저염기 | Y |
| Alkyl(C18-C28) toluenesulphonic acid, calcium salts, low overbase | |
| 알킬(C18-C28) 톨루엔술폰산, 칼슘염, 고염기 | Y |
| Alkyl(C18-C28) toluenesulphonic acid, calcium salts, high overbase | |
| 알릴알코올 | Y |
| Allyl alcohol | |
| 염화알릴 | Y |
| Allyl chloride | |
| 염화 알루미늄 / 염화수소 용액 | Y |
| Aluminium chloride/Hydrogen chloride solution | |
| 수산화 알루미늄, 수산화 나트륨, 탄산나트륨용액(40 % 이하) | Y |
| Aluminium hydroxide, sodium hydroxide, sodium carbonate solution(40% or less) | |
| 황산알루미늄 용액 | Y |
| Aluminium sulphate solution | |
| 2-(2-아미노에톡시) 에탄올 | Z |
| 2-(2-Aminoethoxy) ethanol | |
| 아미노에틸디에타놀라민/아미노에틸에타놀라민용액 | Z |
| Aminoethyldiethanolamine/Aminoethylethanolamine solution | |
| 아미노에틸 에탄올아민 | Z |
| Aminoethyl ethanolamine | |
| N-아미노에틸피페라진 | Z |
| N-Aminoethylpiperazine | |
| 2-아미노-2-메틸-1-프로판올 | Z |
| 2-Amino-2-methyl-1-propanol | |
| 암모니아 수용액(28% 이하) | Y |
| Ammonia aqueous(28% or less) | |
| 염화암모늄용액(25% 미만)(*) | Z |
| Ammonium chloride solution(less than 25%)(*) | |
| 인산암모늄수소 용액 | Z |
| Ammonium hydrogen phosphate solution | |
| 암모늄 리그노술포네이트용액 | Z |
| Ammonium lignosulphonate solutions | |
| 질산암모늄 용액(93% 이하) | Z |
| Ammonium nitrate solution(93% or less)(*) | |
| 암모늄 폴리인산염 용액 | Z |
| Ammonium polyphosphate solution | |

| | |
|---|---|
| 황화암모늄 용액 | Z |
| Ammonium sulphate solution | |
| 황화암모늄 용액(45% 이하) | Y |
| Ammonium sulphide solution(45% or less)(*) | |
| 암모늄 티오황산용액(60% 이하) | Z |
| Ammonium thiosulphate solution(60% or less) | |
| 아세트산아밀(모든 이성질체) | Y |
| Amyl acetate(all isomers) | |
| n-아밀 알코올 | Z |
| n-Amyl alcohol | |
| 아밀 알코올, 일차 | Z |
| Amyl alcohol, primary | |
| sec-아밀 알코올 | Z |
| sec-Amyl alcohol | |
| tert-아밀 알코올 | Z |
| tert-Amyl alcohol | |
| tert-아밀 에틸 에테르 | Z |
| tert-Amyl ethyl ether | |
| tert-아밀 메틸 에테르 | X |
| tert-Amyl methyl ether | |
| 아닐린 | Y |
| Aniline | |
| 아릴 폴리올레핀(C11-C50) | Y |
| Aryl polyolefins(C11-C50) | |
| 항공용 알킬레이트(C8 파라핀 및 이소파라핀으로 비동점이 95-120℃)* | X |
| Aviation alkylates(C8 paraffins and iso-paraffins BPT 95 - 120°C) | |
| 장쇄알카릴술포산바름(C11-C50) | Y |
| Barium long chain(C11-C50) alkaryl sulphonate | |
| 벤젠 및 벤젠이 10% 이상 포함된 혼합물 | Y |
| Benzene and mixtures having 10% benzene or more(i) | |
| 벤젠 술포닐 염화화합물 | Y |
| Benzene sulphonyl chloride | |
| 벤젠트리카르복실산,트리옥틸 에스테르 | Y |
| Benzenetricarboxylic acid, trioctyl ester | |
| 아세트산 벤질 | Y |
| Benzyl acetate | |
| 벤질 알코올 | Y |
| Benzyl alcohol | |

| | |
|---|---|
| 염화벤질 | Y |
| Benzyl chloride | |
| 디젤/가스 오일 및 FAME의 바이오연료혼합물(> 25 %이지만 <99 부피 %) | X |
| Bio-fuel blends of Diesel/gas oil and FAME(>25% but <99% by volume) | |
| 디젤/가스 오일 및 식물성 오일의 바이오연료혼합물(> 25 %이지만 <99 부피 %) | X |
| Bio-fuel blends of Diesel/gas oil and vegetable oil(>25% but <99% by volume) | |
| 가솔린과 에틸알코올의 바이오연료 혼합물(> 25 %이지만 <99 부피 %) | X |
| Bio-fuel blends of Gasoline and Ethyl alcohol(>25% but <99% by volume) | |
| 비스(2-에틸헥실) 테레프탈레이트 | Y |
| Bis(2-ethylhexyl) terephthalate | |
| 브레이크액혼합물폴리(2-8) 알킬렌(C2-C3) 글리콜/폴리알킬렌(C2-C10) 모노알킬(C1-C4) 에테르와 붕산에스테르 | Z |
| Brake fluid base mix: Poly(2-8)alkylene(C2-C3) glycols/Polyalkylene(C2-C10) glycols monoalkyl(C1-C4) ethers and their borate esters | |
| 브로모클로르메탄 | Z |
| Bromochloromethane | |
| 부텐 올리고머 | X |
| Butene oligomer | |
| 2-부톡시에탄올(58%)/하이퍼브랜치 폴리에스테르아미드(42%)(혼합물) | Y |
| 2-Butoxyethanol(58%)/Hyperbranched polyesteramide(42%)(mixture) | |
| 아세트산부틸(모든 이성질체) | Y |
| Butyl acetate(all isomers) | |
| 아크릴산부틸(모든 이성질체) | Y |
| Butyl acrylate(all isomers) | |
| tert-부틸 알코올 | Z |
| tert-Butyl alcohol | |
| 부틸아민(모든 이성질체) | Y |
| Butylamine(all isomers) | |
| 부틸벤젠(모든 이성질체) | X |
| Butylbenzene(all isomers) | |
| 프탈산 벤질부틸 | X |
| Butyl benzyl phthalate | |
| 부티르산부틸(모든 이성질체) | Y |
| Butyl butyrate(all isomers) | |
| 부틸/데실/세틸/메타아크릴산 에이코실의 혼합물 | Y |
| Butyl/Decyl/Cetyl/Eicosyl methacrylate mixture | |

| | |
|---|---|
| 부틸렌 글리콜 | Z |
| Butylene glycol | |
| 산화 1,2-부틸렌 | Y |
| 1,2-Butylene oxide | |
| n-부틸에테르 | Y |
| n-Butyl ether | |
| 메타크릴산 부틸 | Z |
| Butyl methacrylate | |
| 프로피온산 n-부틸 | Y |
| n-Butyl propionate | |
| 부틸알데히드(모든 이성질체) | Y |
| Butyraldehyde(all isomers) | |
| 부티르산 | Y |
| Butyric acid | |
| 감마-부티로락톤 | Y |
| gamma-Butyrolactone | |
| 칼슘 알칼리 설포네이트(C11-C50) | Z |
| Calcium alkaryl sulphonate(C11-C50) | |
| 칼슘 알킬(C10-C28) 살리실레이트 | Y |
| Calcium alkyl(C10-C28) salicylate | |
| 탄화칼슘슬러리 | Y |
| Calcium hydroxide slurry | |
| 하이포아염소산 칼슘 용액(15% 이하) | Y |
| Calcium hypochlorite solution(15% or less) | |
| 하이포아염소산 칼슘 용액(15% 초과) | X |
| Calcium hypochlorite solution(more than 15%) | |
| 칼슘 리그노술포네이트용액 | Z |
| Calcium lignosulphonate solutions | |
| 장쇄알킬페네이트칼슘(C5-C10) | Y |
| Calcium long-chain alkyl(C5-C10) phenate | |
| 장쇄알킬페네이트칼슘(C11-C40) | Y |
| Calcium long-chain alkyl(C11-C40) phenate | |
| 황화장쇄알킬페네이트칼슘(C8-C40) | Y |
| Calcium long-chain alkyl phenate sulphide(C8-C40) | |
| 장쇄알킬살리실염화칼슘(C13+) | Y |
| Calcium long-chain alkyl salicylate(C13+) | |
| 칼슘 장쇄 알킬(C18-C28) 살리실레이트 | Y |
| Calcium long-chain alkyl(C18-C28) salicylate | |

| | |
|--|---|
| 질산칼슘/질산마그네슘/염화칼륨용액 | Z |
| Calcium nitrate/Magnesium nitrate/Potassium chloride solution | |
| 질산 칼슘 용액(50% 이하) | Z |
| Calcium nitrate solution(50% or less) | |
| 카멜리나 오일 | Y |
| Camelina oil | |
| 엡실론-카프로락탐(용융상 또는 수용액) | Z |
| epsilon-Caprolactam(molten or aqueous solutions) | |
| 석탄산오일 | Y |
| Carbolic oil | |
| 이황화탄소 | Y |
| Carbon disulphide | |
| 사염화탄소 | Y |
| Carbon tetrachloride | |
| 캐슈너트 셸유(미가공) | Y |
| Cashew nut shell oil(untreated) | |
| 파마자유 | Y |
| Castor oil | |
| 세슘 포름 산염 용액(*) | Y |
| Cesium formate solution(*) | |
| 메타크릴산세틸/메타크릴산 에이코실 혼합물 | Y |
| Cetyl/Eicosyl methacrylate mixture | |
| 염소산화 파라핀류(C10-C13) | X |
| Chlorinated paraffins(C10-C13) | |
| 염소산화 파라핀류(C14-C17)(염소 50% 이상과 C13 1% 이하 또는 더 짧은 체인) | X |
| Chlorinated paraffins(C14-C17) (with 50% chlorine or more, and less than 1% C13 or shorter chains) | |
| 클로로아세트산(80% 이하) | Y |
| Chloroacetic acid(80% or less) | |
| 클로로벤젠 | Y |
| Chlorobenzene | |
| 클로로포름 | Y |
| Chloroform | |
| 클로로히드린(정제하지 않은 것) | Y |
| Chlorohydrins(crude) | |
| 4-클로로-2-메틸렌옥시아세트산 디메틸아민염 용액 | Y |
| 4-chloro-2-methylphenoxyacetic acid, dimethylamine salt solution | |

| | |
|---|---|
| o-클로니트로벤젠 | Y |
| o-Chloronitrobenzene | |
| 1-(4-클로로페닐)-4,4-디메틸-펜탄-3-one | Y |
| 1-(4-Chlorophenyl)-4,4- dimethyl-pentan-3-one | |
| 2-또는 3-클로로프로 피온산 | Z |
| 2- or 3-Chloropropionic acid | |
| 클로로술폰산 | Y |
| Chlorosulphonic acid | |
| m-클로로톨루엔 | Y |
| m-Chlorotoluene | |
| o-클로로톨루엔 | Y |
| o-Chlorotoluene | |
| p-클로로톨루엔 | Y |
| p-Chlorotoluene | |
| 클로로톨루엔(혼합 이성질체) | Y |
| Chlorotoluenes(mixed isomers) | |
| 염화콜린 용액 | Z |
| Choline chloride solutions | |
| 시트르산(70% 이하) | Z |
| Citric acid(70% or less) | |
| 콜타르 | X |
| Coal tar | |
| 콜타르 나프타 용제 | Y |
| Coal tar naphtha solvent | |
| 콜타르피치(용융상태)(*) | X |
| Coal tar pitch(molten)(*) | |
| 코코아버터 | Y |
| Cocoa butter | |
| 야자유 | Y |
| Coconut oil | |
| 지방산야자 유 | Y |
| Coconut oil fatty acid | |
| 지방산 야자유 메틸 에스테르 | Y |
| Coconut oil fatty acid methyl ester | |
| 장연쇄(C17+) 알케이노산구리염 | Y |
| Copper salt of long chain(C17+) alkanoic acid | |
| 옥수수유 | Y |
| Corn Oil | |

| | |
|---|---|
| 면실유 | Y |
| Cotton seed oil | |
| 크레오소트(콜타르) | X |
| Creosote(coal tar) | |
| 크레솔(모든 이성질체) | Y |
| Cresols(all isomers) | |
| 크레졸/페놀/자일레놀 혼합물 | Y |
| Cresol/Phenol/Xylenol mixture | |
| 크레실산, 석탄산으로 분해되지 않은 것 | Y |
| Cresylic acid, dephenolized | |
| 크레졸산 나트륨염 용액 | Y |
| Cresylic acid, sodium salt solution | |
| 크로톤알데히드 | X |
| Crotonaldehyde | |
| 1,5,9-시클로도데카트리엔 | X |
| 1,5,9-Cyclododecatriene | |
| 시클로헵탄 | X |
| Cycloheptane | |
| 시클로헥산 | Y |
| Cyclohexane | |
| 시클로 헥산-1, 2-디카르복실산, 디이소노닐에스테르 | Y |
| Cyclohexane-1,2-dicarboxylic acid, diisononyl ester | |
| 시클로헥산 산화 생성물, 나트륨염 용액 | Z |
| Cyclohexane oxidation products, sodium salts solution | |
| 시클로헥산올 | Y |
| Cyclohexanol | |
| 시클로헥산온 | Z |
| Cyclohexanone | |
| 시클로헥산온, 시클로헥산올 혼합물 | Y |
| Cyclohexanone, Cyclohexanol mixture | |
| 아세트산 시클로헥실 | Y |
| Cyclohexyl acetate | |
| 시클로헥실아민 | Y |
| Cyclohexylamine | |
| 1,3-시클로펜타디엔 이합체(용융상) | Y |
| 1,3-Cyclopentadiene dimer(molten) | |
| 시클로펜탄 | Y |
| Cyclopentane | |

| | |
|---|---|
| 시클로펜텐 | Y |
| Cyclopentene | |
| p-시멘 | Y |
| p-Cymene | |
| 데카히드로나프탈렌 | Y |
| Decahydronaphthalene | |
| 데칸산 | X |
| Decanoic acid | |
| 데센 | X |
| Decene | |
| 아크릴산 데실 | X |
| Decyl acrylate | |
| 데실 알코올(모든 이성질체) | Y |
| Decyl alcohol(all isomers) | |
| 데실/도데실/테트라데실 알코올 혼합물 | Y |
| Decyl/Dodecyl/Tetradecyl alcohol mixture | |
| 데실옥시테트라하이드로티오펜 디옥사이드 | X |
| Decyloxytetrahydrothiophene dioxide | |
| 디아세톤 알코올 | Z |
| Diacetone alcohol | |
| 디알킬(C8-C9) 디페닐아민 | Z |
| Dialkyl(C8-C9) diphenylamines | |
| 디알킬(C7-C13)프탈레이트 | X |
| Dialkyl(C7-C13) phthalates | |
| 디알킬(C9-C10) 프탈레이트 | Y |
| Dialkyl(C9-C10) phthalates | |
| 디알킬 티오포스페이트 나트륨용액 | Y |
| Dialkyl thiophosphates sodium salts solution | |
| 2,6-디아미노헥사노익 산 포스포네이트 혼합염용액 | Z |
| 2,6-Diaminohexanoic acid phosphonate mixed salts solution | |
| 디브로모메탄 | Y |
| Dibromomethane | |
| 디부틸아민 | Y |
| Dibutylamine | |
| 인산염 수소 디부틸 | Y |
| Dibutyl hydrogen phosphonate | |
| 2,6-다이-터트-부틸페놀 | X |
| 2,6-Di-tert-butylphenol | |

| | |
|--|---|
| 프탈산 디부틸 | X |
| Dibutyl phthalate | |
| 디부틸 테레프탈레이트 | Y |
| Dibutyl terephthalate | |
| 디클로로벤젠(모든 이성질체) | X |
| Dichlorobenzene(all isomers) | |
| 3,4-디클로르-1-부텐 | Y |
| 3,4-Dichloro-1-butene | |
| 1,1-디클로로에탄 | Z |
| 1,1-Dichloroethane | |
| 디클로로에틸 에테르 | Y |
| Dichloroethyl ether | |
| 1, 6-디클로헥산 | Y |
| 1,6-Dichlorohexane | |
| 2,2'-디클로로이소프로필에테르 | Y |
| 2,2'-Dichloroisopropyl ether | |
| 디클로로메탄 | Y |
| Dichloromethane | |
| 2,4-디클로로페놀 | Y |
| 2,4-Dichlorophenol | |
| 2,4- 디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 디에탄올아민염용액 | Y |
| 2,4-Dichlorophenoxyacetic acid, diethanolamine salt solution | |
| 2,4- 디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 디메틸아민염용액(70 % 이하) | Y |
| 2,4-Dichlorophenoxyacetic acid, dimethylamine salt solution(70% or less) | |
| 2,4- 디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 트리이소프로판올아민염용액 | Y |
| 2,4-Dichlorophenoxyacetic acid, triisopropanolamine salt solution | |
| 1,1-디클로로프로판 | Y |
| 1,1-Dichloropropane | |
| 1,2-디클로로프로판 | Y |
| 1,2-Dichloropropane | |
| 1,3-디클로로프로판 | X |
| 1,3-Dichloropropane | |
| 디클로로프로펜/디클로로프로판 혼합물 | X |
| Dichloropropene/Dichloropropane mixtures | |
| 2,2- 디클로로프로피온산 | Y |
| 2,2-Dichloropropionic acid | |
| 디시클로펜타디엔, 수지 등급 81~89% | Y |
| Dicyclopentadiene, Resin Grade, 81-89% | |

| | |
|---|---|
| 디에탄올아민 | Y |
| Diethanolamine | |
| 디에틸아민 | Y |
| Diethylamine | |
| 디에틸아미노에탄올 | Y |
| Diethylaminoethanol | |
| 2,6-디에틸아닐린 | Y |
| 2,6-Diethylaniline | |
| 디에틸벤젠 | Y |
| Diethylbenzene | |
| 디에틸렌 글리콜 | Z |
| Diethylene glycol | |
| 디에틸렌 글리콜 디 부틸 에테르 | Z |
| Diethylene glycol dibutyl ether | |
| 디에틸렌 글리콜 디 에틸 에테르 | Z |
| Diethylene glycol diethyl ether | |
| 디에틸렌 글리콜, 프탈레이트 | Y |
| Diethylene glycol phthalate | |
| 디에틸렌트리아민 | Y |
| Diethylenetriamine | |
| 디에틸렌트리아민 펜타아세트산, 펜타나트륨염용액 | Z |
| Diethylenetriaminepentaacetic acid, pentasodium salt solution | |
| 디에틸에테르 | Z |
| Diethyl ether(*) | |
| 아디프산 디-(2-에틸헥실) | Y |
| Di-(2-ethylhexyl) adipate | |
| 디-(2-에틸헥실)인산 | Y |
| Di-(2-ethylhexyl) phosphoric acid | |
| 프탈산 디에틸 | Y |
| Diethyl phthalate | |
| 황산 디에틸 | Y |
| Diethyl sulphate | |
| 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 에테르 | X |
| Diglycidyl ether of bisphenol A | |
| 비스페놀 F 디글리시딜 에테르 | Y |
| Diglycidyl ether of bisphenol F | |
| 디헵틸 프탈레이트 | Y |
| Dihexyl phthalate | |

| | |
|---|---|
| 아디프산 디-n-헥실 | X |
| Di-n-hexyl adipate | |
| 디헥실 프탈레이트 | Y |
| Dihexyl phthalate | |
| 디이소부틸아민 | Y |
| Diisobutylamine | |
| 디이소부틸렌 | Y |
| Diisobutylene | |
| 디이소부틸 케톤 | Y |
| Diisobutyl ketone | |
| 프탈산 디이소부틸 | X |
| Diisobutyl phthalate | |
| 디이소노닐 아디페이트 | Y |
| Diisononyl adipate | |
| 디이소옥틸 프탈산 | Y |
| Diisooctyl phthalate | |
| 디이소프로판올아민 | Z |
| Diisopropanolamine | |
| 디이소프로필아민 | Y |
| Diisopropylamine | |
| 디이소프로필벤젠(모든 이성질체) | X |
| Diisopropylbenzene(all isomers) | |
| 디이소프로필나프탈렌 | Y |
| Diisopropylnaphthalene | |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 Z |
| N,N-Dimethylacetamide | |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용액(40% 이하) | Z |
| N,N-Dimethylacetamide solution(40% or less) | |
| 아디프산 디메틸 | Y |
| Dimethyl adipate | |
| 디메틸아민 용액(45% 이하) | Y |
| Dimethylamine solution(45% or less) | |
| 디에틸아민 용액(45% 초과 55% 이하) | Y |
| Dimethylamine solution(greater than 45% but not greater than 55%) | |
| 디에틸아민 용액(55% 초과 65% 이하) | Y |
| Dimethylamine solution(greater than 55% but not greater than 65%) | |
| N,N-디메틸시클로헥실아민 | Y |
| N,N-Dimethylcyclohexylamine | |

| | |
|---|---|
| 디메틸 디설파이드 | Y |
| Dimethyl disulphide | |
| N,N-디메틸도데실아민 | Y |
| N,N-Dimethyldodecylamine | |
| 디메틸에탄올아민 | Y |
| Dimethylethanolamine | |
| 디메틸포름아미드 | Y |
| Dimethylformamide | |
| 글루타르산 디메틸 | Y |
| Dimethyl glutarate | |
| 인산 수소 디메틸 | Y |
| Dimethyl hydrogen phosphite | |
| 디메틸 옥탄산 | Y |
| Dimethyl octanoic acid | |
| 프탈산 디메틸 | Y |
| Dimethyl phthalate | |
| 디메틸폴리실록산 | Y |
| Dimethylpolysiloxane | |
| 2,2-디메틸프로판-1, 3-디올(용융상 또는 용액) | Z |
| 2,2-Dimethylpropane-1,3-diol(molten or solution) | |
| 숙신산 디메틸 | Y |
| Dimethyl succinate | |
| 디니트로톨루엔(용융상) | X |
| Dinitrotoluene(molten) | |
| 디노닐 프탈레이트 | Y |
| Dinonyl phthalate | |
| 디옥틸 프탈레이트 | Y |
| Dioctyl phthalate | |
| 1,4-디옥산 | Y |
| 1,4-dioxane | |
| 디펜텐 | Y |
| Dipentene | |
| 디페닐 | X |
| Diphenyl | |
| 디페닐아민(용융) | Y |
| Diphenylamine(molten) | |
| 디페닐아민, 2,2,4- 트리메틸 펜텐과의 반응 생성물 | Y |
| Diphenylamine, reaction product with 2,2,4-Trimethylpentene | |

| | |
|--|---|
| 디페닐아민, 알킬화 | Y |
| Diphenylamines, alkylated | |
| 디페닐/디페닐 에테르 혼합물 | X |
| Diphenyl/Diphenyl ether mixtures | |
| 디페닐 에테르 | X |
| Diphenyl ether | |
| 디페닐 에테르/디페닐 페닐 에테르 혼합물 | X |
| Diphenyl ether/Diphenyl phenyl ether mixture | |
| 디페닐메탄 디 이소시아네이트 | Y |
| Diphenylmethane diisocyanate | |
| 디페닐올 프로판-에피클로로히드린 수지 | X |
| Diphenylol propane-epichlorohydrin resins | |
| 디-n-프로필아민 | Y |
| Di-n-propylamine | |
| 디프로필렌 글리콜 | Z |
| Dipropylene glycol | |
| 디티오카바메이트 에스테르(C7-C35) | X |
| Dithiocarbamate ester(C7-C35) | |
| 디트리데실 아디 페이트 | Y |
| Ditridecyl adipate | |
| 디트리데실 프탈레이트 | Y |
| Ditridecyl phthalate | |
| 프탈산 디운데실 | Y |
| Diundecyl phthalate | |
| 도데칸(모든 이성질체) | Y |
| Dodecane(all isomers) | |
| tert-도데칸에티올 | Y |
| tert-Dodecanethiol | |
| 1-도데센 | Y |
| 1-Dodecene | |
| 도데센(모든 이성질체) | X |
| Dodecene(all isomers) | |
| 도데실알코올 | Y |
| Dodecyl alcohol | |
| N-도데실 메르캡탄 | X |
| n-Dodecyl mercaptan | |
| 도데실아민/테트라 데실 아민 혼합물 | Y |
| Dodecylamine/Tetradecylamine mixture | |

| | |
|---|---|
| 도데실벤젠 | Y |
| Dodecylbenzene | |
| 도데실 디페닐 에테르 디설포네이트 용액 | X |
| Dodecyl diphenyl ether disulphonate solution | |
| 도데실 하이드록시프로필 설파이드 | X |
| Dodecyl hydroxypropyl sulphide | |
| 메타크릴산 도데실 | Y |
| Dodecyl methacrylate | |
| 도데실/메타크릴산 옥타데실 혼합물 | Y |
| Dodecyl/Octadecyl methacrylate mixture | |
| 도데실/메타크릴산 펜타데실 혼합물 | Y |
| Dodecyl/Pentadecyl methacrylate mixture | |
| 도데실 페놀 | X |
| Dodecyl phenol | |
| 도데실 자일렌 | Y |
| Dodecyl Xylene | |
| 드릴링 염수(염화 아연 함유) | X |
| Drilling brines(Containing zinc chloride) | |
| 드릴링 염수(브롬화 칼슘 함유) | Z |
| Drilling brines(Containing calcium bromide) | |
| 에피클로로히드린 | Y |
| Epichlorohydrin | |
| 에탄올아민 | Y |
| Ethanolamine | |
| 아세트산 2-에톡시에틸 | Y |
| 2-Ethoxyethyl acetate | |
| 에톡시레이티드 장쇄(C16+) 알킬옥시알킬아민 | Y |
| Ethoxylated long chain(C16+) alkyloxyalkylamine | |
| 에톡 실화 수지 아민(> 95 %) | X |
| Ethoxylated tallow amine(> 95%) | |
| 아세트산 에틸 | Z |
| Ethyl acetate | |
| 아세토아세트산 에틸 | Z |
| Ethyl acetoacetate | |
| 아크릴산 에틸 | Y |
| Ethyl acrylate | |
| 에틸아민 | Y |
| Ethylamine(*) | |

| | |
|--|---|
| 에틸아밀케톤 | Y |
| Ethyl amyl ketone | |
| 에틸벤젠 | Y |
| Ethylbenzene | |
| 에틸 tert-부틸 에테르 | Y |
| Ethyl tert-butyl ether | |
| 에틸 부티레이트 | Y |
| Ethyl butyrate | |
| 에틸시클로헥산 | Y |
| Ethylcyclohexane | |
| N-에틸시클로헥실아민 | Y |
| N-Ethylcyclohexylamine | |
| S-에틸 디프로필티오카바메이트 | Y |
| S-Ethyl dipropylthiocarbamate | |
| 에틸렌 카보네이트 | Z |
| Ethylene carbonate | |
| 에틸렌 클로로히드린 | Y |
| Ethylene chlorohydrin | |
| 에틸렌 시아노히드린 | Y |
| Ethylene cyanohydrin | |
| 에틸렌디아민 | Y |
| Ethylenediamine | |
|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 테트라나트륨염용액 | Y |
|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tetrasodium salt solution | |
| 이브롬화 에틸렌 | Y |
| Ethylene dibromide | |
| 이염화에틸렌 | Y |
| Ethylene dichloride | |
| 에틸렌 글리콜 | Z |
| Ethylene glycol | |
| 에틸렌 글리콜 아세테이트 | Y |
| Ethylene glycol acetate | |
| 아세트산 에틸렌글리콜 부틸에테르 | Y |
| Ethylene glycol butyl ether acetate | |
| 디아세트산 에틸렌글리콜 | Y |
| Ethylene glycol diacetate | |
| 에틸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아세테이트 | Y |
| Ethylene glycol methyl ether acetate | |

| | |
|--|---|
| 에틸렌글리콜 모노알킬에테르 | Y |
| Ethylene glycol monoalkyl ethers | |
| 에틸렌 글리콜 페닐 에테르 | Z |
| Ethylene glycol phenyl ether | |
| 에틸렌 글리콜 페닐 에테르 / 디 에틸렌 글리콜 페닐 에테르 혼합물 | Z |
| Ethylene glycol phenyl ether/Diethylene glycol phenyl ether mixture | |
| 에틸렌 글리콜(> 75 %) / 나트륨 알킬 카르복실레이트 / 붕 혼합물 | Y |
| Ethylene glycol(>75%)/sodium alkyl carboxylates/borax mixture | |
| 에틸렌 글리콜(> 85 %) / 나트륨 알킬 카르복실레이트의 혼합물 | Z |
| Ethylene glycol(>85%)/sodium alkyl carboxylates mixture | |
| 산화 에틸렌/산화 프로필렌 혼합물로 산화 에틸렌이 질량비 30% 이하인 것 | Y |
| Ethylene oxide/Propylene oxide mixture with an ethylene oxide Content of not more than 30% by mass | |
| 메틸렌-비닐 아세트산 공중합체(에멀전) | Y |
| Ethylene-vinyl acetate copolymer(emulsion) | |
| 에틸-3-에톡시프로시피온산 | Y |
| Ethyl-3-ethoxypropionate | |
| 2-에틸헥산산 | Y |
| 2-Ethylhexanoic acid | |
| 아크릴산 2-에틸헥실 | Y |
| 2-Ethylhexyl acrylate | |
| 2-에틸헥실아민 | Y |
| 2-Ethylhexylamine | |
| 2-에틸-2-(히드록시메틸)프로판-1,3-디올,(C8-C10) 에스테르 | Y |
| 2-Ethyl-2-(hydroxymethyl) propane-1,3-diol(C8-C10) ester | |
| 에틸리덴 노르보르넨 | Y |
| Ethylidene norbornene | |
| 메타크릴산 에틸 | Y |
| Ethyl methacrylate | |
| N-에틸메틸알릴아민 | Y |
| N-Ethylmethylallylamine | |
| 프로피온산에틸 | Y |
| Ethyl propionate | |
| 2-에틸-3-프로필아크로레인 | Y |
| 2-Ethyl-3-propylacrolein | |
| 에틸 톨루엔 | Y |
| Ethyl toluene | |

| | |
|---|---|
| 지방산(포화된 것 C13+) | Y |
| Fatty acid saturated(C13+) | |
| 지방산 메틸 에스테르(m) | Y |
| Fatty acid methyl esters(m) | |
| 지방산(C8-C10) | Y |
| Fatty acids,(C8-C10) | |
| 지방산(C12 +) | Y |
| Fatty acids,(C12+) | |
| 지방산(C16 +) | Y |
| Fatty acids,(C16+) | |
| 지방산, 본질적 선형, C6-C18, 2-에틸헥실 에스테르 | Y |
| Fatty acids, essentially linear(C6-C18) 2-ethylhexyl ester | |
| 염화 제2철 용액 | Y |
| Ferric chloride solutions | |
| 질산/질산 제2철의 용액 | Y |
| Ferric nitrate/Nitric acid solution | |
| 어유 | Y |
| Fish oil | |
| 물고기 사료 단백질 농축 물(4 % 아세트산을 함유하는 이하 포름산) | Y |
| Fish silage protein concentrate(Containing 4% or less formic acid) | |
| 어류 단백질 농축 물(4 % 이하 포름산 함유) | Z |
| Fish protein concentrate(Containing 4% or less formic acid) | |
| 플루오르화규소산 용액(20-30%) | Y |
| Fluorosilicic acid solution(20-30%) | |
| 포름알데히드 용액(45% 이하) | Y |
| Formaldehyde solutions(45% or less) | |
| 포마이드 | Y |
| Formamide | |
| 포름산(85 % 이하인 산) | Y |
| Formic acid(85% or less acid) | |
| 포름산(85 % 이상) | Y |
| Formic acid(over 85%) | |
| (18 % 프로피온산 및 25 % 포름산 나트륨까지 함유하는) 혼합 포름산 | Z |
| Formic acid mixture(Containing up to 18% propionic acid and up to 25% sodium formate) | |
| 푸르푸랄 | Y |
| Furfural | |
| 푸르푸릴 알코올 | Y |
| 법제처 | |

| | |
|---|---|
| Furfuryl alcohol | |
| 글루시 톨 / 글리세롤 혼합 프로 폭 실화(아민 10 % 미만 함유) | Z |
| Glucitol/glycerol blend propoxylated(Containing less than 10% amines) | |
| 글루시 톨 / 글리세롤 혼합 프로 폭 실화(아민 10 % 이상 함유) | Y |
| Glucitol/glycerol blend propoxylated(Containing 10% or more amines) | |
| 글루타르알데히드 용액(50% 이하) | Y |
| Glutaraldehyde solutions(50% or less) | |
| 글리세린 | Z |
| Glycerine | |
| 글리세롤 모노 올 레이트 | Y |
| Glycerol monooleate | |
| 프로폭실산화 글리세롤 | Z |
| Glycerol propoxylated | |
| 프로폭실산화 및 에톡실산화 글리세롤 | Z |
| Glycerol, propoxylated and ethoxylated | |
| 프로폭실산화 및 에톡실산화 글리세롤/자단 혼합물 | Z |
| Glycerol/sucrose blend propoxylated and ethoxylated | |
| 글리세릴 트리아세트산 | Z |
| Glyceryl triacetate | |
| 트리알킬(C10)아세트산 글리 시딜 에스테르 | Y |
| Glycidyl ester of C10 trialkylacetic acid | |
| 글리신, 나트륨 염 용액 | Z |
| Glycine, sodium salt solution | |
| 글리콜릭산 용액(70% 이하) | Z |
| Glycolic acid solution(70% or less) | |
| 글리옥살 용액(40% 이하) | Y |
| Glyoxal solution(40% or less) | |
| 글리옥실산용액(50% 이하) | Y |
| Glyoxylic acid solution(50% or less) | |
| 글리포스페이트 용액(계면활성제 미 함유) | Y |
| Glyphosate solution(not Containing surfactant) | |
| 포도씨 유 | Y |
| Grape Seed Oil | |
| 땅콩 기름 | Y |
| Groundnut oil | |
| 헵탄(모든 이성질체) | X |
| Heptane(all isomers) | |
| 노르말-헵탄산 | Z |

| | |
|--|---|
| n-Heptanoic acid | |
| 헵탄올(모든 이성질체) | Y |
| Heptanol(all isomers)(d) | |
| 헵텐(모든 이성질체) | Y |
| Heptene(all isomers) | |
| 아세트산 헵틸 | Y |
| Heptyl acetate | |
| 1-헥사데실나프탈렌/1,4-비스(헥사데실)나프탈렌 혼합물 | Y |
| 1-Hexadecylnaphthalene/1,4-bis(hexadecyl)naphthalene mixture | |
| 헥사메틸렌디아민(용융상) | Y |
| Hexamethylenediamine(molten) | |
| 헥사메틸렌디아민아디페이트(50% 수용액) | Z |
| Hexamethylenediamine adipate(50% in water) | |
| 헥사메틸렌디아민 용액 | Y |
| Hexamethylenediamine solution | |
|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나산 | Y |
| Hexamethylene diisocyanate | |
| 헥사메틸렌 글리콜 | Z |
| Hexamethylene glycol | |
| 헥사메틸렌이민 | Y |
| Hexamethyleneimine | |
| 헥사 메틸렌 테트라민용액 | Z |
| Hexamethylenetetramine solutions | |
| 헥산(모든 이성질체) | Y |
| Hexane(all isomers) | |
| 1,6-헥산디올, 증류 탑정 | Y |
| 1,6-Hexanediol, distillation overheads | |
| 헥산산 | Y |
| Hexanoic acid | |
| 헥산올 | Y |
| Hexanol | |
| 헥센(모든 이성질체) | Y |
| Hexene(all isomers) | |
| 아세트산 헥실 | Y |
| Hexyl acetate | |
| 헥실렌 글리콜 | Z |
| Hexylene glycol | |
| 탄화수소 왁스 | X |

| | |
|--|---|
| Hydrocarbon wax | |
| 염산 | Z |
| Hydrochloric acid(*) | |
| 과산화수소 용액(질량 60% 이상 70% 이하) | Y |
| Hydrogen peroxide solutions(over 60% but not over 70% by mass) | |
| 과산화수소 용액(질량 8% 이상 60% 이하) | Y |
| Hydrogen peroxide solutions(over 8% but not over 60% by mass) | |
| 아크릴산2-히드록시에틸 | Y |
| 2-Hydroxyethyl acrylate | |
| N-(히드록시에틸)에틸렌디아민삼아세트산, 삼나트륨염 용액 | Y |
| N-(Hydroxyethyl)ethylenediaminetriacetic acid, trisodium salt solution | |
| 2-히드록시-4-(메틸티오)부탄산 | Z |
| 2-Hydroxy-4-(methylthio)butanoic acid | |
| 일라입유 | Y |
| Illipe oil | |
| 이소아밀 알코올 | Z |
| Isoamyl alcohol | |
| 이소부틸 알코올 | Z |
| Isobutyl alcohol | |
| 포름산 이소부틸 | Z |
| Isobutyl formate | |
| 메타크릴산 이소부틸 | Z |
| Isobutyl methacrylate | |
| 이소포론 | Y |
| Isophorone | |
| 이소포론디아민 | Y |
| Isophoronediamine | |
| 디이소시아나산이소포론 | Y |
| Isophorone diisocyanate | |
| 이소프렌 | Y |
| Isoprene | |
| 이소프로판올아민 | Y |
| Isopropanolamine | |
| 아세트산 이소프로필 | Z |
| Isopropyl acetate | |
| 이소프로필아민 | Y |
| Isopropylamine | |
| 이소프로필라민용액(70%이하) | Y |

| | |
|---|---|
| Isopropylamine(70% or less) solution | |
| 이소프로필시클로헥산 | Y |
| Isopropylcyclohexane | |
| 이소프로필 에테르 | Y |
| Isopropyl ether | |
| 자트로파 오일 | Y |
| Jatropha oil | |
| 젖산 | Z |
| Lactic acid | |
| 락토니트릴 용액(80% 이하) | Y |
| Lactonitrile solution(80% or less) | |
| 라드 | Y |
| Lard | |
| 라텍스, 암모니아(1% 이하) | Y |
| Latex, ammonia(1% or less)-inhibited | |
| 라텍스: 카복시기함유 스티렌-부타딘 공중합체와 스티렌-부타딘 고무 | Z |
| Latex: Carboxylated styrene-Butadiene copolymer; Styrene-Butadiene rubber | |
| 라우르산 | X |
| Lauric acid | |
| 리그닌 술폰산, 마그네슘 염 용액 | Z |
| Ligninsulphonic acid, magnesium salt solution | |
| 리그닌술포닉산, 나트륨염용액 | Z |
| Ligninsulphonic acid, sodium salt solution | |
| 아마인유 | Y |
| Linseed oil | |
| 액체화학폐기물 | X |
| Liquid chemical wastes | |
| 장쇄알카릴폴리에테르(C11-C20) | Y |
| Long-chain alkaryl polyether(C11-C20) | |
| 장쇄알킬술포닉산(C16-C60) | Y |
| Long-chain alkaryl sulphonic acid(C16-C60) | |
| 장쇄알킬피네이트/페놀설파이드혼합물 | Y |
| Long-chain alkylphenate/Phenol sulphide mixture | |
| 장쇄 알킬 페놀(C14-C18) | Y |
| Long-chain alkylphenol(C14-C18) | |
| 장쇄 알킬 페놀(C18-C30) | Y |
| Long-chain alkylphenol(C18-C30) | |
| 법제처 | |

| | |
|--|---|
| L-리신 용액(60% 이하) | Z |
| L-Lysine solution(60% or less) | |
| 염화마그네슘 용액 | Z |
| Magnesium chloride solution | |
| 수산화 마그네슘 슬러리 | Z |
| Magnesium hydroxide slurry | |
| 장쇄알카릴술포산 마그네슘(C11-C50) | Y |
| Magnesium long-chain alkaryl sulphonate(C11-C50) | |
| 장쇄알킬살리실산마그네슘(C11+) | Y |
| Magnesium long-chain alkyl salicylate(C11+) | |
| 말레산 무수물 | Y |
| Maleic anhydride | |
| 말레산 무수물-알릴설포산 나트륨 공중 합체 용액 | Z |
| Maleic anhydride-sodium allylsulphonate copolymer solution | |
| 망고씨유 | Y |
| Mango kernel oil | |
| 메라캡토벤조티아졸-나트륨염 용액 | X |
| Mercaptobenzothiazol, sodium salt solution | |
| 산화메시틸 | Z |
| Mesityl oxide | |
| 메탐 나트륨염 용액 | X |
| Metam sodium solution | |
| 메타크릴산 | Y |
| Methacrylic acid | |
| 메타크릴릭산-알콕시폴리(산화알킬렌)메타크릴산혼성중합체, 나트륨
염수요액(45%이하) | Z |
| Methacrylic acid - alkoxypoly(alkylene oxide) methacrylate copolymer,
sodium salt aqueous solution(45% or less) | |
| 이염화에틸렌에 녹아 있는 메타 크릴산수지 | Y |
| Methacrylic resin in ethylene dichloride | |
| 메타크릴로니브릴 | Y |
| Methacrylonitrile | |
| 3-메톡시-1-부탄올 | Z |
| 3-methoxy-1-butanol | |
| 3-메톡시부틸 아세트산 | Y |
| 3-Methoxybutyl acetate | |
| N-(2-메톡시-1-메틸 에틸)-2-에틸-6-메틸 클로로아세트아닐리드 | X |
| N-(2-Methoxy-1-methyl ethyl)-2-ethyl-6-methyl chloroacetanilide | |

| | |
|---|---|
| 메틸 아세트산 | Z |
| Methyl acetate | |
| 메틸 아세토아세트산 | Z |
| Methyl acetoacetate | |
| 아크릴산 메틸 | Y |
| Methyl acrylate | |
| 메틸 알코올 | Y |
| Methyl alcohol(*) | |
| 메틸아민 용액(42% 이하) | Y |
| Methylamine solutions(42% or less) | |
| 아세트산 메틸아밀 | Y |
| Methylamyl acetate | |
| 메틸아밀 알코올 | Z |
| Methylamyl alcohol | |
| 메틸아밀 케톤 | Z |
| Methyl amyl ketone | |
| N-메틸아닐린 | Y |
| N-Methylaniline | |
| 알파-메틸 벤질 알코올과 아세토 페논(15 % 이하) | Y |
| alpha-Methylbenzyl alcohol with acetophenone(15% or less) | |
| 메틸부텐올 | Y |
| Methylbutenol | |
| 메틸 tert-부틸에테르 | Z |
| Methyl tert-butyl ether | |
| 메틸 부틸 케톤 | Y |
| Methyl butyl ketone | |
| 메틸부티놀 | Z |
| Methylbutynol | |
| 부티르산 메틸 | Y |
| Methyl butyrate | |
| 메틸시클로헥산* | Y |
| Methylcyclohexane | |
| 메틸시클로펜타디엔 이합체 | Y |
| Methylcyclopentadiene dimer | |
| 메틸시클로펜타디엔일 망간 트리카보닐 | X |
| Methylcyclopentadienyl manganese tricarbonyl | |
| 메틸 디에탄올-아민 | Y |
| Methyl diethanolamine | |

| | |
|--|---|
| 2-메틸-6-에틸 아닐린 | Y |
| 2-Methyl-6-ethyl aniline | |
| 메틸 에틸 케톤 | Z |
| Methyl ethyl ketone | |
| 2-메틸-5-에틸피리딘 | Y |
| 2-Methyl-5-ethyl pyridine | |
| 포름산 메틸 | Z |
| Methyl formate | |
| 2- 메틸 글루 타로 니트릴과 2- 에틸 숙 시노 니트릴(12 % 이하) | Z |
| 2-Methylglutaronitrile with 2-Ethylsuccinonitrile(12% or less) | |
| 2-메틸-2-히드록시-3-부탄 | Z |
| 2-Methyl-2-hydroxy-3-butyne | |
| 메틸 이소부틸 케톤 | Z |
| Methyl isobutyl ketone | |
| 메타크릴산 메틸 | Y |
| Methyl methacrylate | |
| 3-메틸-3-메톡시부탄올 | Z |
| 3-Methyl-3-methoxybutanol | |
| 메틸나프탈렌(용융상) | X |
| Methyl naphthalene(molten) | |
| N- 메틸 글루 카민 용액(70 % 이하) | Z |
| N-Methylglucamine solution(70% or less) | |
| 2-메틸-1, 3-프로판디올 | Z |
| 2-Methyl-1,3-propanediol | |
| 2-메틸피리딘 | Z |
| 2-Methylpyridine | |
| 3-메틸피리딘 | Z |
| 3-Methylpyridine | |
| 4-메틸피리딘 | Z |
| 4-Methylpyridine | |
| N-메틸-2-피롤리돈 | Y |
| N-Methyl-2-pyrrolidone | |
| 메틸 프로필 케톤 | Z |
| Methyl propyl ketone | |
| 살리실산 메틸 | Y |
| Methyl salicylate | |
| 알파-메틸스티렌 | Y |
| α-Methylstyrene | |

| | |
|--|---|
| 3-(메틸티오)프로피온알데히드 | Y |
| 3-(methylthio)propionaldehyde | |
| 몰리브데넘다황화물 롱체인 알킬 디티온카바마이드 혼합물 | Y |
| Molybdenum polysulphide long chain alkyl dithiocarbamide complex | |
| 모르폴린 | Y |
| Morpholine | |
| 자동차연료용 노킹억제 화합물(알킬아연을 함유한 것) | X |
| Motor fuel anti-knock compound(Containing lead alkyls) | |
| 미르신 | X |
| Myrcene | |
| 나프탈렌(용융상) | X |
| Naphthalene(molten) | |
| 나프탈렌 원유(용융) | Y |
| Naphthalene crude(molten) | |
| 나프탈렌술포닉산-포름알데이드혼성중합체, 나트륨염용액 | Z |
| Naphthalenesulphonic acid-Formaldehyde copolymer, sodium salt solution | |
| 네오데칸산 | Y |
| Neodecanoic acid | |
| 혼산(질산과 황산의 혼합물) | Y |
| Nitrating acid(mixture of sulphuric and nitric acids) | |
| 질산(70% 이상) | Y |
| Nitric acid(70% and over) | |
| 질산(70% 미만) | Y |
| Nitric acid(less than 70%) | |
| 니트릴로트리아세트산, 트리나트륨염 용액 | Y |
| Nitrilotriacetic acid, trisodium salt solution | |
| 니트로벤젠 | Y |
| Nitrobenzene | |
| 니트로에탄 | Y |
| Nitroethane | |
| 니트로에탄(80%)/니트로프로판(20%) | Y |
| Nitroethane(80%)/Nitropropane(20%) | |
| 니트로에탄, 1-니트로프로판 혼합물(각15%이상) | Y |
| Nitroethane, 1-Nitropropane(each 15% or more) mixture | |
| o-니트로페놀(용융상) | Y |
| o-Nitrophenol(molten) | |
| 1-또는 2-니트로프로판 | Y |
| 1-또는 2-Nitropropane | |

| | |
|---|---|
| 니트로프로판(60%)/니트로에탄(40%) 혼합물 | Y |
| Nitropropane (60%)/Nitroethane(40%) mixture | |
| o- 또는 p-톨루엔 | Y |
| o- or p-Nitrotoluenes | |
| 노난(모든 이성질체) | X |
| Nonane(all isomers) | |
| 노난산(모든 이성질체) | Y |
| Nonanoic acid(all isomers) | |
| 비 식용 산업용 등급의 팜 오일 | Y |
| Non-edible industrial grade palm oil | |
| 노넨 | Y |
| Nonene(all isomers) | |
| 노닐 알코올(모든 이성질체) | Y |
| Nonyl alcohol(all isomers) | |
| 노닐 메타크릴레이트 모노머 | Y |
| Nonyl methacrylate monomer | |
| 노닐페놀 | X |
| Nonylphenol | |
| 노닐페놀 폴리(4+) 에톡실레이트 | Y |
| Nonylphenol poly(4+)ethoxylate | |
| 기타의 유해액체물질(1)(인화점이 60℃를 초과하고, 선형이 1에 해당되는 X류 물질) | X |
| Noxious liquid, NF,(1) n.o.s.(trade name ..., Contains ...) ST1, Cat. X | |
| 기타의 유해액체물질(2)(인화점이 60℃이하이고, 선형이 1에 해당되는 X류 물질) | X |
| Noxious liquid, F,(2) n.o.s.(trade name ..., Contains ...) ST1, Cat. X | |
| 기타의 유해액체물질(3)(인화점이 60℃를 초과하고, 선형이 2에 해당되는 X류 물질) | X |
| Noxious liquid, NF,(3) n.o.s.(trade name ..., Contains ...) ST2, Cat. X | |
| 기타의 유해액체물질(4)(인화점이 60℃이하이고, 선형이 2에 해당되는 X류 물질) | X |
| Noxious liquid, F,(4) n.o.s.(trade name ..., Contains ...) ST2, Cat. X | |
| 기타의 유해액체물질(5)(인화점이 60℃를 초과하고, 선형이 2에 해당되는 Y류 물질) | Y |
| Noxious liquid, NF,(5) n.o.s.(trade name ..., Contains ...) ST2, Cat. Y | |
| 기타의 유해액체물질(6)(인화점이 60℃이하 이고, 선형이 2에 해당되는 Y류 물질) | Y |
| Noxious liquid, F,(6) n.o.s.(trade name ..., Contains ...) ST2, Cat. Y | |
| 기타의 유해액체물질(7)(인화점이 60℃를 초과하고, 선형이 3인 Y류 물질) | Y |

| | |
|---|---|
| Noxious liquid, NF,(7) n.o.s.(trade name, Contains) ST3, Cat. Y | |
| 기타의 유해액체물질(8)(인화점이 60℃이하 이고, 선형이 3인 Y류 물질) | Y |
| Noxious liquid, F,(8) n.o.s. (trade name, Contains) ST3, Cat. Y | |
| 기타의 유해액체물질(9)(인화점이 60℃를 초과하고, 선형이 3인 Z류 물질) | Z |
| Noxious liquid, NF,(9) n.o.s.(trade name, Contains) ST3, Cat. Z | |
| 기타의 유해액체물질(10)(인화점이 60℃이하이고, 선형이 3인 Z류 물질) | Z |
| Noxious liquid, F,(10) n.o.s.(trade name, Contains) ST3, Cat. Z | |
| 옥타 메틸 사이클로 테트라 실록산 | Y |
| Octamethylcyclotetrasiloxane | |
| 옥탄(모든 이성질체) | X |
| Octane(all isomers) | |
| 옥탄산(모든 이성질체) | Y |
| Octanoic acid(all isomers) | |
| 옥탄올(모든 이성질체) | Y |
| Octanol(all isomers) | |
| 옥텐(모든 이성질체) | Y |
| Octene(all isomers) | |
| n-옥틸 아세트산 | Y |
| n-Octyl acetate | |
| 옥틸 알데히드 | Y |
| Octyl aldehydes | |
| 아디프산 옥틸 데실 | Y |
| Octyl decyl adipate | |
| n-옥틸 메르 카프탄 | X |
| n-Octyl mercaptan | |
| 해양 오염 벌크 액체 P(O) | X |
| Offshore Contaminated bulk liquid P(o) | |
| 해양 오염 벌크 액체 S(O) | X |
| Offshore Contaminated bulk liquid S(o) | |
| 알킬올레핀 에스테르 혼성중합체(분자량 2000+) | Y |
| Olefin-Alkyl ester copolymer(molecular weight 2000+) | |
| 올레핀 혼합물(C7-C9) C8 풍부, 안정화 | X |
| Olefin Mixture(C7-C9) C8 rich, stabilised | |
| 올레핀혼합물(C5-C7) | Y |
| Olefin mixtures(C5-C7) | |
| 올레핀혼합물(C5-C15) | X |
| Olefin mixtures(C5-C15) | |
| 올레핀(C13+, 모든 이성질체) | Y |

| | |
|--|---|
| Olefins(C13+, all isomers) | |
| 알파올레핀혼합물(C6-C18) | X |
| alpha-Olefins(C6-C18) mixtures | |
| 올레인산 | Y |
| Oleic acid | |
| 올름 | Y |
| Oleum | |
| 올레일아민 | X |
| Oleylamine | |
| 올리브유 | Y |
| Olive oil | |
| 합산소지방족탄화수소혼합물 | Z |
| Oxygenated aliphatic hydrocarbon mixture | |
| 팜산유 | Y |
| Palm acid oil | |
| 팜지방산 증류액 | Y |
| Palm fatty acid distillate | |
| 야자씨유 산화오일 | Y |
| Palm kernel acid oil | |
| 팜 커널 지방산 증류 | Y |
| Palm kernel fatty acid distillate | |
| 팜씨유 | Y |
| Palm kernel oil | |
| 팜씨올레인 | Y |
| Palm kernel olein | |
| 팜씨스테아린 | Y |
| Palm kernel stearin | |
| 팜유(유리 지방산 함유량이 5% 미만) | Y |
| Palm mid-fraction | |
| 팜유 | Y |
| Palm oil | |
| 팜유지방산메틸에스테르 | Y |
| Palm oil fatty acid methyl ester | |
| 팜 올레인 | Y |
| Palm olein | |
| 팜 스테아린 | Y |
| Palm stearin | |
| 파라핀 왁스, 고도-정제 | Y |

| | |
|--|---|
| Paraffin wax, highly-refined | |
| 파라핀 왁스, 세미-정제 | X |
| Paraffin wax, semi-refined | |
| 파라알데히드 | Z |
| Paraldehyde | |
| 파라알데히드-암모니아 반응 제품 | Y |
| Paraldehyde-ammonia reaction product | |
| 펜타클로로에탄 | Y |
| Pentachloroethane | |
| 1,3-펜타디엔 | Y |
| 1,3-Pentadiene | |
| 1,3-펜타 디엔(50 % 이상), 사이클로 펜텐 및 이성질체, 혼합물 | Y |
| 1,3-Pentadiene(greater than 50%), cyclopentene and isomers, mixtures | |
| 펜타에틸렌헥사민 | X |
| Pentaethylenehexamine | |
| 펜탄(모든 이성질체) * | Y |
| Pentane(all isomers) | |
| 펜탄산 | Y |
| Pentanoic acid | |
| n-펜탄산(64%)/2-메틸 부틸산(36%) 혼합물 | Y |
| n-Pentanoic acid(64%)/2-Methyl butyric acid(36%) mixture | |
| 펜텐(모든 이성질체) * | Y |
| Pentene(all isomers) | |
| 프로피온산 n-펜틸 | Y |
| n-Pentyl propionate | |
| 퍼클로로에틸렌 | Y |
| Perchloroethylene | |
| 페놀 | Y |
| Phenol | |
| 1-페닐-1-크시릴에탄* | Y |
| 1-Phenyl-1-xylyl ethane | |
| 포스페이트에스터, 알킬아민(C12-C14) | Y |
| Phosphate esters, alkyl(C12-C14) amine | |
| 인산 | Z |
| Phosphoric acid | |
| 인, 황색 또는 백색 | X |
| Phosphorus, yellow or white(*) | |
| 포타시 무수물(용융상) | Y |

| | |
|--|---|
| Phthalic anhydride(molten) | |
| 알파-피넨 | X |
| alpha-Pinene | |
| 베타-피넨 | X |
| beta-Pinene | |
| 소나무 유 | X |
| Pine oil | |
| 피페 라진, 68 % 용액 | Y |
| Piperazine, 68% solution | |
| 폴리아크릴산용액(40%이하) | Z |
| Polyacrylic acid solution(40% or less) | |
| 자일렌에 녹아있는 아크릴산 폴리알킬(C18-C22) | Y |
| Polyalkyl(C18-C22) acrylate in xylene | |
| 폴리 알킬 알켄 아민 숙신이 미드, 폴리브덴 옥시 설파이드 | Y |
| Polyalkylalkenaminesuccinimide, molybdenum oxysulphide | |
| 폴리(2-8)알킬렌 글리콜모노알킬(C1-C6) 에테르 | Z |
| Poly(2-8)alkylene glycol monoalkyl(C1-C6) ether | |
| 폴리(2-8)알킬렌 글리콜모노알킬(C1-C6) 에테르 아세테이트 | Y |
| Poly(2-8)alkylene glycol monoalkyl (C1-C6) ether acetate | |
| 폴리알킬(C10-C20) 메타크릴레이트 | Y |
| Polyalkyl(C10-C20) methacrylate | |
| 폴리알킬(C10-C18) 메타크릴레이트/에틸렌-프로필렌 혼성중합체 혼합물 | Y |
| Polyalkyl(C10-C18) methacrylate/ethylene-propylene copolymer mixture | |
| 폴리 알루미늄 클로라이드 용액 | Z |
| Polyaluminium chloride solution | |
| 폴리부텐 | Y |
| Polybutene | |
| 폴리부테닐숙신이미드 | Y |
| Polybutenyl succinimide | |
| 폴리(2+)시클릭 방향족 | X |
| Poly(2+)cyclic aromatics | |
| 폴리에테르(분자량 1350+) | Y |
| Polyether(molecular weight 1350+) | |
| 폴리에틸렌 글리콜 | Z |
| Polyethylene glycol | |
| 폴리에틸렌 글리콜 디메틸 에테르 | Z |
| Polyethylene glycol dimethyl ether | |

| | |
|--|---|
| 폴리(에틸렌 글리콜) 메틸 부 에테르(MW> 1,000) | Z |
| Poly(ethylene glycol) methylbutenyl ether(MW>1000) | |
| 폴리에틸렌 폴리아민 | Y |
| Polyethylene polyamines | |
| 폴리에틸렌 폴리아민(50 % 이상의 C5 -C20 파라핀 오일) | Y |
| Polyethylene polyamines(more than 50% C5 -C20 paraffin oil) | |
| 폴리황산 제2철 용액 | Y |
| Polyferric sulphate solution | |
| 폴리(이미노에틸렌)-융합-N-폴리(에틸렌옥시) 용액(90% 이하) | Z |
| Poly(iminoethylene)-graft-N-poly(ethyleneoxy) solution(90% or less) | |
| 지방족(C10-C14) 용제에 녹아있는 폴리이소부텐아민 | Y |
| Polyisobutenamine in aliphatic(C10-C14) solvent | |
| 폴리이소부테닐 무수물 부가체 | Y |
| (Polyisobutene) amino products in aliphatic hydrocarbons | |
| 폴리이소부테닐 무수물 부가체 | Z |
| Polyisobutenyl anhydride adduct | |
| 폴리(4+), 이소 부틸 렌(MW> 224) | X |
| Poly(4+)isobutylene(MW>224) | |
| 폴리 이소 부틸 렌(MW≤224) | Y |
| Polyisobutylene(MW≤224) | |
| 폴리 글리세린, 나트륨 염 용액(3 % 미만의 수산화 나트륨 함유) | Z |
| Polyglycerin, sodium salt solution(Containing less than 3% sodium hydroxide) | |
| 폴리메틸렌 폴리페닐 이소시아나산 | Y |
| Polymethylene polyphenyl isocyanate | |
| 폴리올레핀(분자량300+) | Y |
| Polyolefin(molecular weight 300+) | |
| 폴리올레핀 아미드 알켄아민(C17+) | Y |
| Polyolefin amide alkeneamine(C17+) | |
| 폴리올레핀 아미드 알켄아민 붕산염(C28-C250) | Y |
| Polyolefin amide alkeneamine borate(C28-C250) | |
| 폴리올레핀 아미드 알켄 아민 폴리올 | Y |
| Polyolefin amide alkeneamine polyol | |
| 폴리올레핀아민(C28-C250) | Y |
| Polyolefinamine(C28-C250) | |
| 알킬(C2-C4)벤젠에 녹아있는 폴리올레핀아민 | Y |
| Polyolefinamine in alkyl(C2-C4) benzenes | |
| 방향족화합물에 녹아있는 폴리올레핀아민 | Y |

| | |
|--|---|
| Polyolefinamine in aromatic solvent | |
| 폴리올레핀 아미노에스테르염(분자량2000+) | Y |
| Polyolefin aminoester salts(molecular weight 2000+) | |
| 폴리올레핀 무수물 | Y |
| Polyolefin anhydride | |
| 폴리올레핀 에테르(C28-C250) | Y |
| Polyolefin ester(C28-C250) | |
| 폴리올레핀 석탄산 아민(C28-C250) | Y |
| Polyolefin phenolic amine(C28-C250) | |
| 포스포러스황화 폴리 올레핀바륨 유도체(C28-C250) | Y |
| Polyolefin phosphorusulphide, barium derivative(C28-C250) | |
| 폴리(20)옥시에틸렌 소르비탄 모노올레인산 | Y |
| Poly(20)oxyethylene sorbitan monooleate | |
| 폴리(5+)프로필렌 | Y |
| Poly(5+)propylene | |
| 폴리프로필렌 글리콜 | Z |
| Polypropylene glycol | |
| 폴리실록산 | Y |
| Polysiloxane | |
| 염화칼륨 용액 | Z |
| Potassium chloride solution | |
| 수산화칼륨 용액 | Y |
| Potassium hydroxide solution(*) | |
| 포름산 칼륨 용액 | Z |
| Potassium formate solutions | |
| 유산염 칼륨 | Y |
| Potassium oleate | |
| 티오황산염 칼륨(50% 이하) | Y |
| Potassium thiosulphate(50% or less) | |
| n-프로판올아민 | Y |
| n-Propanolamine | |
| 2-프로펜 -1-아민염, N, N-디메틸 -N-2-프로펜일-, 염화물, 동종 중합체 용액 | Y |
| 2-Propene-1-aminium, N, N-dimethyl-N-2-propenyl-, chloride, homopolymer solution | |
| beta-프로피오락톤 | Y |
| beta-Propiolactone | |
| 프로피온알데히드 | Y |

| | |
|--|---|
| Propionaldehyde | |
| 프로피온산 | Y |
| Propionic acid | |
| 프로피온산 무수물 | Y |
| Propionic anhydride | |
| 프로피온니트릴 | Y |
| Propionitrile | |
| n-프로필 아세트산 | Y |
| n-Propyl acetate | |
| n-프로필 알코올 | Y |
| n-Propyl alcohol | |
| n-프로필아민 | Z |
| n-Propylamine | |
| 프로필벤젠(모든 이성질체) | Y |
| Propylbenzene(all isomers) | |
| 프로필렌 카보네이트 | Z |
| Propylene carbonate | |
| 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아세트산 | Z |
| Propylene glycol methyl ether acetate | |
| 프로필렌 글리콜 모노알킬 에테르 | Z |
| Propylene glycol monoalkyl ether | |
| 프로필렌 글리콜 페닐 에테르 | Z |
| Propylene glycol phenyl ether | |
| 산화프로필렌 | Y |
| Propylene oxide | |
| 프로필렌 사합체 | X |
| Propylene tetramer | |
| 프로필렌 삼합체 | Y |
| Propylene trimer | |
| 피리딘 | Y |
| Pyridine | |
| 열분해가솔린(벤젠포함) | Y |
| Pyrolysis gasoline(Containing benzene) | |
| 평지씨유 | Y |
| Rapeseed oil | |
| 평지씨유(저 에르크산, 유리 지방산 함유량이 4% 미만) | Y |
| Rapeseed oil(low erucic acid Containing less than 4% free fatty acids) | |
| 유채씨유지방산메틸에스터 | Y |

| | |
|--|---|
| Rape seed oil fatty acid methyl esters | |
| 수지 오일, 증류 | Y |
| Resin oil, distilled | |
| 쌀겨유 | Y |
| Rice bran oil | |
| 로진 | Y |
| Rosin | |
| 홍화유 | Y |
| Safflower oil | |
| 쉐어버터 | Y |
| Shea butter | |
| 술폰산알킬(C14-C17) 나트륨(60-65%용액) | Y |
| Sodium alkyl(C14-C17) sulphonates(60-65% solution) | |
| 알루미늄화규산 나트륨 슬러리 | Z |
| Sodium aluminosilicate slurry | |
| 벤조산 나트륨 | Z |
| Sodium benzoate | |
| 붕수소화나트륨(15%이하)/수산화 나트륨 용액 | Y |
| Sodium borohydride(15% or less)/Sodium hydroxide solution(*) | |
| 나트륨 탄산염 용액 | Y |
| Sodium bromide solution(less than 50%)(*) | |
| 염소산나트륨 용액(50%이하) | Z |
| Sodium carbonate solution(*) | |
| 중크롬산나트륨 용액(70%이하) | Z |
| Sodium chlorate solution(50% or less)(*) | |
| 황화수소나트륨(6% 이하) /탄산나트륨(3% 이하) 용액 | Y |
| Sodium dichromate solution(70% or less) | |
| 황화수소나트륨(6% 이하) / 탄산나트륨(3% 이하) 용액 | Z |
| Sodium hydrogen sulphide(6% or less)/Sodium carbonate(3% or less) solution | |
| 아황산수소나트륨 용액(45% 이하) | Z |
| Sodium hydrogen sulphite solution(45% or less) | |
| 황화암모늄/황화수소나트륨 용액 | Y |
| Sodium hydrosulphide/Ammonium sulphide solution(*) | |
| 황화수소나트륨 용액(45%이하) | Z |
| Sodium hydrosulphide solution(45% or less)(*) | |
| 수산화나트륨 용액 | Y |
| Sodium hydroxide solution(*) | |

| | |
|---|---|
|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 용액(15% 이하) | Y |
| Sodium hypochlorite solution(15% or less) | |
| 메틸 알콜의 나트륨 메틸 21-30 % | Y |
| Sodium methylete 21-30% in methyl alcohol | |
| 아질산나트륨 용액 | Y |
| Sodium nitrite solution | |
| 술폰산석유나트륨 | Y |
| Sodium petroleum sulphonate | |
| 폴리(4+)아크릴나트륨용액 | Z |
| Sodium poly(4+)acrylate solutions | |
| 규산나트륨 용액 | Y |
| Sodium silicate solution | |
| 황화나트륨 용액(15% 이하) | Z |
| Sodium sulphate solutions | |
| 황화나트륨 용액(15% 이하) | Y |
| Sodium sulphide solution(15% or less) | |
| 아황산나트륨 용액(25%이하) | Y |
| Sodium sulphite solution(25% or less) | |
| 티오시안산나트륨 용액(56% 이하) | Y |
| Sodium thiocyanate solution(56% or less) | |
| 대두유 | Y |
| Soyabean oil | |
| 콩기름 지방산 메틸에스테르 | Y |
| Soybean Oil Fatty Acid Methyl Ester | |
| 스티렌모노머 | Y |
| Styrene monomer | |
| 황화탄화수소(C3-C88) | Y |
| Sulphohydrocarbon(C3-C88) | |
| 술폰란 | Y |
| Sulpholane | |
| 황(용융상) | Z |
| Sulphur(molten)(*) | |
| 황산 | Y |
| Sulphuric acid | |
| 폐황산 | Y |
| Sulphuric acid, spent | |
| 황산화 지방(C14-C20) | Z |
| Sulphurized fat(C14-C20) | |

| | |
|--|---|
| 황산화폴리올피나미드알칸(C28-C250)아민 | Z |
| Sulphurized polyolefinamide alkene(C28-C250) amine | |
| 해바라기씨 유 | Y |
| Sunflower seed oil | |
| 톨유(원유) | Y |
| Tall oil, crude | |
| 톨유(정제유) | Y |
| Tall oil, distilled | |
| 톨유지방산(수지산 20%미만) | Y |
| Tall oil fatty acid(resin acids less than 20%) | |
| 톨유 피치 | Y |
| Tall oil pitch | |
| 톨유 비누, 원유 | Y |
| Tall oil soap, crude | |
| 수지 | Y |
| Tallow | |
| 수지지방산 | Y |
| Tallow fatty acid | |
| 테트라클로로에탄 | Y |
| Tetrachloroethane | |
| 테트라에틸렌 클리콜 | Z |
| Tetraethylene glycol | |
| 테트라에틸렌 펜타아민 | Y |
| Tetraethylene pentamine | |
| 테트라히드로푸란 | Z |
| Tetrahydrofuran | |
| 테트라히드로나프탈렌 | Y |
| Tetrahydronaphthalene | |
| 테트라메틸벤젠(모든 이성질체) | X |
| Tetramethylbenzene(all isomers) | |
| 이산화 티타늄 슬러리 | Z |
| Titanium dioxide slurry | |
| 톨루엔 | Y |
| Toluene | |
| 톨루엔디아민 | Y |
| Toluenediamine | |
| 디이소시아산 톨루엔 | Y |
| Toluene diisocyanate | |

| | |
|---|---|
| o-톨루이딘 | Y |
| o-Toluidine | |
| 인산 트리부틸 | Y |
| Tributyl phosphate | |
| 1,2,3-트리클로로벤젠(용융상) | X |
| 1,2,3-Trichlorobenzene(molten) | |
| 1,2,4-트리클로로벤젠 | X |
| 1,2,4-Trichlorobenzene | |
| 1,1,1-트리클로로에탄 | Y |
| 1,1,1-Trichloroethane | |
| 1,1,2-트리클로로에탄 | Y |
| 1,1,2-Trichloroethane | |
| 트리클로로에틸렌 | Y |
| Trichloroethylene | |
| 1,2,3-트리클로로프로판 | Y |
| 1,2,3-Trichloropropane | |
| 1,1,2-트리클로로-1,2,2-트리플루오로에탄 | Y |
| 1,1,2-Trichloro-1,2,2-Trifluoroethane | |
| 인산 트리크레실(오르토 이성질체 1% 이상 함유) | Y |
| Tricresyl phosphate(Containing 1% or more ortho-isomer) | |
| 인산트라이크레실(오르토이성질체1%미만 함유) | Y |
| Tricresyl phosphate(Containing less than 1% ortho-isomer) | |
| 트리데칸 | Y |
| Tridecane | |
| 트리데칸산 | Y |
| Tridecanoic acid | |
| 트리데킬 아세트산 | Y |
| Tridecyl acetate | |
| 트리에탄올아민 | Z |
| Triethanolamine | |
| 트리에틸아민 | Y |
| Triethylamine | |
| 트리에틸벤젠 | X |
| Triethylbenzene | |
| 트리에틸렌테트라민 | Y |
| Triethylenetetramine | |
| 트리에틸 인산 | Z |
| Triethyl phosphate | |

| | |
|---|---|
| 아인산트리에틸 | Z |
| Triethyl phosphite | |
| 트리아이소프로판올아민 | Z |
| Triisopropanolamine | |
| 인산트리아이소프로필화페닐 | X |
| Triisopropylated phenyl phosphates | |
| 트리메틸아세트산 | Y |
| Trimethylacetic acid | |
| 트리메틸아민 용액(30%이하) | Z |
| Trimethylamine solution(30% or less) | |
| 트리메틸벤젠(모든 이성질체) | X |
| Trimethylbenzene(all isomers) | |
| 프로폭실산트리메틸올 프로판 | Z |
| Trimethylol propane propoxylated | |
| 2,2,4-트리메틸-1,3-펜탄디올 디이소부티르산염 | Y |
| 2,2,4-Trimethyl-1,3-pentanediol diisobutyrate | |
| 2,2,4-트리메틸-1,3-펜탄디올-1-이소부티르산염 | Y |
| 2,2,4-Trimethyl-1,3-pentanediol-1-isobutyrate | |
| 1,3,5-트리옥산 | Y |
| 1,3,5-Trioxane | |
| 트리프로필렌 글리콜 | Z |
| Tripropylene glycol | |
| 인산트릭심릴 | X |
| Trixylyl phosphate | |
| 유동유 | Y |
| Tung oil | |
| 생송지 | X |
| Turpentine | |
| 운데칸산 | Y |
| Undecanoic acid | |
| 1-운데센 | X |
| 1-Undecene | |
| 운데실 알코올 | X |
| Undecyl alcohol | |
| 요소/질산암모늄 용액 | Y |
| Urea/Ammonium nitrate solution | |
| 요소/인산암모늄 용액 | Y |
| Urea/Ammonium phosphate solution | |

| | |
|---|---|
| 요소 용액 | Z |
| Urea solution | |
| 폐 식용유(m) | X |
| Used cooking oil(m) | |
| 사용한 식용유(트리글리 세라이드, C16-C18 및 C18 불포화)(m)(n) | Y |
| Used cooking oil(Triglycerides, C16-C18 and C18 unsaturated)(m)(n) | |
| 발레르알데히드(모든 이성질체) | Y |
| Valeraldehyde(all isomers) | |
| 식물성 산화유(m) | Y |
| Vegetable acid oils(m) | |
| 식물성 지방산 증류 액(m) | Y |
| Vegetable fatty acid distillates(m) | |
| 유리 지방산(m)이 15 % 미만인 식물성 기름 혼합물 | Y |
| Vegetable oil mixtures, Containing less than 15% free fatty acid(m) | |
| 아세트산비닐 | Y |
| Vinyl acetate | |
| 비닐에틸에테르 | Z |
| Vinyl ethyl ether | |
| 염화비닐리덴 | Y |
| Vinylidene chloride | |
| 네오 데칸산비닐 | Y |
| Vinyl neodecanoate | |
| 비닐톨루엔 | Y |
| Vinyltoluene | |
| 백색주정, 저방향족(15~20%) | Y |
| White spirit, low(15-20%) aromatic | |
| 아세트산 나트륨 / 옥살산 나트륨 함유 목재 리그닌 | Z |
| Wood lignin with sodium acetate/oxalate | |
| 자일렌 | Y |
| Xylenes | |
| 자일렌/에틸벤젠혼합물(10%이상) | Y |
| Xylenes/ethylbenzene(10% or more) mixture | |
| 자일렌올 | Y |
| Xylenol | |
| 디티오인산아연알킬(C7-C16) | Y |
| Zinc alkaryl dithiophosphate(C7-C16) | |
| 카르복스아마이드아연알킬 | Y |
| Zinc alkenyl carboxamide | |

| | |
|------------------------------------|---|
| 디티오인산 아연알킬(C3-C14) | Y |
| Zinc alkyl dithiophosphate(C3-C14) | |

비고

이 표 외의 물질에 대하여는 「위험화학품 산적운송선박의 구조 및 설비를 위한 국제코드」(IBC Code)에 따른다.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신설 2011.12.23>

북아메리카 배출규제해역(제6조제2호의2 관련)

1. 다음 좌표를 연결하는 측지선으로 둘러싸인 미국과 캐나다의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해역

| 위도 | 경도 | 위도 | 경도 |
|--------------|---------------|--------------|---------------|
| 북위 32도32분10초 | 서경 117도6분11초 | 북위 42도47분34초 | 서경 129도5분42초 |
| 북위 32도32분4초 | 서경 117도7분29초 | 북위 43도26분22초 | 서경 129도1분26초 |
| 북위 32도31분39초 | 서경 117도14분20초 | 북위 44도24분43초 | 서경 128도41분23초 |
| 북위 32도33분13초 | 서경 117도15분50초 | 북위 45도30분43초 | 서경 128도40분2초 |
| 북위 32도34분21초 | 서경 117도22분1초 | 북위 46도11분1초 | 서경 128도49분1초 |
| 북위 32도35분23초 | 서경 117도27분53초 | 북위 46도33분55초 | 서경 129도4분29초 |
| 북위 32도37분38초 | 서경 117도49분34초 | 북위 47도39분55초 | 서경 131도15분41초 |
| 북위 31도7분59초 | 서경 118도36분21초 | 북위 48도32분32초 | 서경 132도41분0초 |
| 북위 30도33분25초 | 서경 121도47분29초 | 북위 48도57분47초 | 서경 133도14분47초 |
| 북위 31도46분11초 | 서경 123도17분22초 | 북위 49도22분39초 | 서경 134도15분51초 |
| 북위 32도21분58초 | 서경 123도50분44초 | 북위 50도1분52초 | 서경 135도19분1초 |
| 북위 32도56분39초 | 서경 124도11분47초 | 북위 51도3분18초 | 서경 136도45분45초 |
| 북위 33도40분12초 | 서경 124도27분15초 | 북위 51도54분4초 | 서경 137도41분54초 |
| 북위 34도31분28초 | 서경 125도16분52초 | 북위 52도45분12초 | 서경 138도20분14초 |
| 북위 35도14분38초 | 서경 125도43분23초 | 북위 53도29분20초 | 서경 138도40분36초 |
| 북위 35도43분60초 | 서경 126도18분53초 | 북위 53도40분39초 | 서경 138도48분53초 |
| 북위 36도16분25초 | 서경 126도45분30초 | 북위 54도13분45초 | 서경 139도32분38초 |
| 북위 37도1분35초 | 서경 127도7분18초 | 북위 54도39분25초 | 서경 139도56분19초 |
| 북위 37도45분39초 | 서경 127도38분2초 | 북위 55도20분18초 | 서경 140도55분45초 |
| 북위 38도25분8초 | 서경 127도52분60초 | 북위 56도7분12초 | 서경 141도36분18초 |
| 북위 39도25분5초 | 서경 128도31분23초 | 북위 56도28분32초 | 서경 142도17분19초 |
| 북위 40도18분47초 | 서경 128도45분46초 | 북위 56도37분19초 | 서경 142도48분57초 |
| 북위 41도13분39초 | 서경 128도40분22초 | 북위 58도51분4초 | 서경 153도15분3초 |
| 북위 42도12분49초 | 서경 129도0분38초 | | |

2. 다음 좌표를 연결하는 측지선으로 둘러싸인 미국, 캐나다, 프랑스(세인트 피레 미켈론)의 대서양 연안과 미국의 멕시코만 연안에 위치한 해역

| 위도 | 경도 | 위도 | 경도 |
|--------------|--------------|--------------|--------------|
| 북위 60도0분0초 | 서경 64도9분36초 | 북위 40도41분38초 | 서경 59도5분18초 |
| 북위 60도0분0초 | 서경 56도43분0초 | 북위 40도38분33초 | 서경 60도12분20초 |
| 북위 58도54분1초 | 서경 55도38분5초 | 북위 40도45분46초 | 서경 61도14분3초 |
| 북위 57도50분52초 | 서경 55도3분47초 | 북위 41도4분52초 | 서경 62도17분49초 |
| 북위 57도35분13초 | 서경 54도0분59초 | 북위 40도36분55초 | 서경 63도10분49초 |
| 북위 57도14분20초 | 서경 53도7분58초 | 북위 40도17분32초 | 서경 64도8분37초 |
| 북위 56도48분9초 | 서경 52도23분29초 | 북위 40도7분46초 | 서경 64도59분31초 |
| 북위 56도18분13초 | 서경 51도49분42초 | 북위 40도5분44초 | 서경 65도53분7초 |
| 북위 54도23분21초 | 서경 50도17분44초 | 북위 39도58분5초 | 서경 65도59분51초 |
| 북위 53도44분54초 | 서경 50도7분17초 | 북위 39도28분24초 | 서경 66도21분14초 |
| 북위 53도4분59초 | 서경 50도10분5초 | 북위 39도1분54초 | 서경 66도48분33초 |
| 북위 52도20분6초 | 서경 49도57분9초 | 북위 38도39분16초 | 서경 67도20분59초 |
| 북위 51도34분20초 | 서경 48도52분45초 | 북위 38도19분20초 | 서경 68도2분1초 |
| 북위 50도40분15초 | 서경 48도16분4초 | 북위 38도5분29초 | 서경 68도46분55초 |
| 북위 50도2분28초 | 서경 48도7분3초 | 북위 37도58분14초 | 서경 69도34분7초 |
| 북위 49도24분3초 | 서경 48도9분35초 | 북위 37도57분47초 | 서경 70도24분9초 |
| 북위 48도39분22초 | 서경 47도55분17초 | 북위 37도52분46초 | 서경 70도37분50초 |
| 북위 47도24분25초 | 서경 47도46분56초 | 북위 37도18분37초 | 서경 71도8분33초 |
| 북위 46도35분12초 | 서경 48도0분54초 | 북위 36도32분25초 | 서경 71도33분59초 |
| 북위 45도19분45초 | 서경 48도43분28초 | 북위 35도34분58초 | 서경 71도26분2초 |
| 북위 44도43분38초 | 서경 49도16분50초 | 북위 34도33분10초 | 서경 71도37분4초 |
| 북위 44도16분38초 | 서경 49도51분23초 | 북위 33도54분49초 | 서경 71도52분35초 |
| 북위 43도53분15초 | 서경 50도34분1초 | 북위 33도19분23초 | 서경 72도17분12초 |
| 북위 43도36분6초 | 서경 51도20분41초 | 북위 32도45분31초 | 서경 72도54분5초 |
| 북위 43도23분59초 | 서경 52도17분22초 | 북위 31도55분13초 | 서경 74도12분2초 |
| 북위 43도19분50초 | 서경 53도20분13초 | 북위 31도27분14초 | 서경 75도15분20초 |
| 북위 43도21분14초 | 서경 54도9분20초 | 북위 31도3분16초 | 서경 75도51분18초 |
| 북위 43도29분41초 | 서경 55도7분41초 | 북위 30도45분42초 | 서경 76도31분38초 |
| 북위 42도40분12초 | 서경 55도31분44초 | 북위 30도12분48초 | 서경 77도18분29초 |
| 북위 41도58분19초 | 서경 56도9분34초 | 북위 29도25분17초 | 서경 76도56분42초 |
| 북위 41도20분21초 | 서경 57도5분13초 | 북위 28도36분59초 | 서경 76도47분60초 |
| 북위 40도55분34초 | 서경 58도2분55초 | 북위 28도17분13초 | 서경 76도40분10초 |

| 위도 | 경도 | 위도 | 경도 |
|--------------|--------------|--------------|--------------|
| 북위 28도17분12초 | 서경 79도11분23초 | 북위 25도57분48초 | 서경 79도40분38초 |
| 북위 27도52분56초 | 서경 79도28분35초 | 북위 25도56분18초 | 서경 79도41분6초 |
| 북위 27도26분1초 | 서경 79도31분38초 | 북위 25도54분4초 | 서경 79도41분38초 |
| 북위 27도16분13초 | 서경 79도34분18초 | 북위 25도53분24초 | 서경 79도41분46초 |
| 북위 27도11분54초 | 서경 79도34분56초 | 북위 25도51분54초 | 서경 79도41분59초 |
| 북위 27도5분59초 | 서경 79도35분19초 | 북위 25도49분33초 | 서경 79도42분16초 |
| 북위 27도0분28초 | 서경 79도35분17초 | 북위 25도48분24초 | 서경 79도42분23초 |
| 북위 26도55분16초 | 서경 79도34분39초 | 북위 25도48분20초 | 서경 79도42분24초 |
| 북위 26도53분58초 | 서경 79도34분27초 | 북위 25도46분26초 | 서경 79도42분44초 |
| 북위 26도45분46초 | 서경 79도32분41초 | 북위 25도46분16초 | 서경 79도42분45초 |
| 북위 26도44분30초 | 서경 79도32분23초 | 북위 25도43분40초 | 서경 79도42분59초 |
| 북위 26도43분40초 | 서경 79도32분20초 | 북위 25도42분31초 | 서경 79도42분48초 |
| 북위 26도41분12초 | 서경 79도32분1초 | 북위 25도40분37초 | 서경 79도42분27초 |
| 북위 26도38분13초 | 서경 79도31분32초 | 북위 25도37분24초 | 서경 79도42분27초 |
| 북위 26도36분30초 | 서경 79도31분6초 | 북위 25도37분8초 | 서경 79도42분27초 |
| 북위 26도35분21초 | 서경 79도30분50초 | 북위 25도31분3초 | 서경 79도42분12초 |
| 북위 26도34분51초 | 서경 79도30분46초 | 북위 25도27분59초 | 서경 79도42분11초 |
| 북위 26도34분11초 | 서경 79도30분38초 | 북위 25도24분4초 | 서경 79도42분12초 |
| 북위 26도31분12초 | 서경 79도30분15초 | 북위 25도22분21초 | 서경 79도42분20초 |
| 북위 26도29분5초 | 서경 79도29분53초 | 북위 25도21분29초 | 서경 79도42분8초 |
| 북위 26도25분31초 | 서경 79도29분58초 | 북위 25도16분52초 | 서경 79도41분24초 |
| 북위 26도23분29초 | 서경 79도29분55초 | 북위 25도15분57초 | 서경 79도41분31초 |
| 북위 26도23분21초 | 서경 79도29분54초 | 북위 25도10분39초 | 서경 79도41분31초 |
| 북위 26도18분57초 | 서경 79도31분55초 | 북위 25도9분51초 | 서경 79도41분36초 |
| 북위 26도15분26초 | 서경 79도33분17초 | 북위 25도9분3초 | 서경 79도41분45초 |
| 북위 26도15분13초 | 서경 79도33분23초 | 북위 25도3분55초 | 서경 79도42분29초 |
| 북위 26도8분9초 | 서경 79도35분53초 | 북위 25도2분60초 | 서경 79도42분56초 |
| 북위 26도7분47초 | 서경 79도36분9초 | 북위 25도0분30초 | 서경 79도44분5초 |
| 북위 26도6분59초 | 서경 79도36분35초 | 북위 24도59분3초 | 서경 79도44분48초 |
| 북위 26도2분52초 | 서경 79도38분22초 | 북위 24도55분28초 | 서경 79도45분57초 |
| 북위 25도59분30초 | 서경 79도40분3초 | 북위 24도44분18초 | 서경 79도49분24초 |
| 북위 25도59분16초 | 서경 79도40분8초 | 북위 24도43분4초 | 서경 79도49분38초 |

| 위도 | 경도 | 위도 | 경도 |
|--------------|--------------|--------------|--------------|
| 북위 24도42분36초 | 서경 79도50분50초 | 북위 23도55분32초 | 서경 81도12분55초 |
| 북위 24도41분47초 | 서경 79도52분57초 | 북위 23도53분52초 | 서경 81도19분43초 |
| 북위 24도38분32초 | 서경 79도59분58초 | 북위 23도50분52초 | 서경 81도29분59초 |
| 북위 24도36분27초 | 서경 80도3분51초 | 북위 23도50분2초 | 서경 81도39분59초 |
| 북위 24도33분18초 | 서경 80도12분43초 | 북위 23도49분5초 | 서경 81도49분59초 |
| 북위 24도33분5초 | 서경 80도13분21초 | 북위 23도49분5초 | 서경 82도0분11초 |
| 북위 24도32분13초 | 서경 80도15분16초 | 북위 23도49분42초 | 서경 82도9분59초 |
| 북위 24도31분27초 | 서경 80도16분55초 | 북위 23도51분14초 | 서경 82도24분59초 |
| 북위 24도30분57초 | 서경 80도17분47초 | 북위 23도51분14초 | 서경 82도39분59초 |
| 북위 24도30분14초 | 서경 80도19분21초 | 북위 23도49분42초 | 서경 82도48분53초 |
| 북위 24도30분6초 | 서경 80도19분44초 | 북위 23도49분32초 | 서경 82도51분11초 |
| 북위 24도29분38초 | 서경 80도21분5초 | 북위 23도49분24초 | 서경 82도59분59초 |
| 북위 24도28분18초 | 서경 80도24분35초 | 북위 23도49분52초 | 서경 83도14분59초 |
| 북위 24도28분6초 | 서경 80도25분10초 | 북위 23도51분22초 | 서경 83도25분49초 |
| 북위 24도27분23초 | 서경 80도27분20초 | 북위 23도52분27초 | 서경 83도33분1초 |
| 북위 24도26분30초 | 서경 80도29분30초 | 북위 23도54분4초 | 서경 83도41분35초 |
| 북위 24도25분7초 | 서경 80도32분22초 | 북위 23도55분47초 | 서경 83도48분11초 |
| 북위 24도23분30초 | 서경 80도36분9초 | 북위 23도58분38초 | 서경 83도59분59초 |
| 북위 24도22분33초 | 서경 80도38분56초 | 북위 24도9분37초 | 서경 84도29분27초 |
| 북위 24도22분7초 | 서경 80도39분51초 | 북위 24도13분20초 | 서경 84도38분39초 |
| 북위 24도19분31초 | 서경 80도45분21초 | 북위 24도16분41초 | 서경 84도46분7초 |
| 북위 24도19분16초 | 서경 80도45분47초 | 북위 24도23분30초 | 서경 84도59분59초 |
| 북위 24도18분38초 | 서경 80도46분49초 | 북위 24도26분37초 | 서경 85도6분19초 |
| 북위 24도18분35초 | 서경 80도46분54초 | 북위 24도38분57초 | 서경 85도31분54초 |
| 북위 24도9분51초 | 서경 80도59분47초 | 북위 24도44분17초 | 서경 85도43분11초 |
| 북위 24도9분48초 | 서경 80도59분51초 | 북위 24도53분57초 | 서경 85도59분59초 |
| 북위 24도8분58초 | 서경 81도1분7초 | 북위 25도10분44초 | 서경 86도30분7초 |
| 북위 24도8분30초 | 서경 81도1분51초 | 북위 25도43분15초 | 서경 86도21분14초 |
| 북위 24도8분26초 | 서경 81도1분57초 | 북위 26도13분13초 | 서경 86도6분45초 |
| 북위 24도7분28초 | 서경 81도3분6초 | 북위 26도27분22초 | 서경 86도13분15초 |
| 북위 24도2분20초 | 서경 81도9분5초 | 북위 26도33분46초 | 서경 86도37분7초 |
| 북위 23도59분60초 | 서경 81도11분16초 | 북위 26도1분24초 | 서경 87도29분35초 |

| 위도 | 경도 | 위도 | 경도 |
|--------------|--------------|--------------|--------------|
| 북위 25도42분25초 | 서경 88도33분0초 | 북위 26도0분33초 | 서경 96도48분30초 |
| 북위 25도46분54초 | 서경 90도29분41초 | 북위 25도58분32초 | 서경 96도55분28초 |
| 북위 25도44분39초 | 서경 90도47분5초 | 북위 25도58분15초 | 서경 96도58분41초 |
| 북위 25도51분43초 | 서경 91도52분50초 | 북위 25도57분58초 | 서경 97도1분54초 |
| 북위 26도17분44초 | 서경 93도3분59초 | 북위 25도57분41초 | 서경 97도5분8초 |
| 북위 25도59분55초 | 서경 93도33분52초 | 북위 25도57분24초 | 서경 97도8분21초 |
| 북위 26도0분32초 | 서경 95도39분27초 | 북위 25도57분24초 | 서경 97도8분47초 |

3. 다음 좌표를 연결하는 측지선으로 둘러싸인 하와이 제도(하와이, 마우이, 오아후, 모로카이, 니하우, 카우아이, 라나이 및 카호올라웨) 연안에 위치한 해역

| 위도 | 경도 | 위도 | 경도 |
|--------------|---------------|--------------|---------------|
| 북위 22도32분54초 | 서경 153도0분33초 | 북위 18도39분16초 | 서경 161도19분14초 |
| 북위 23도6분5초 | 서경 153도28분36초 | 북위 18도30분31초 | 서경 160도38분30초 |
| 북위 23도32분11초 | 서경 154도2분12초 | 북위 18도29분31초 | 서경 159도56분17초 |
| 북위 23도51분47초 | 서경 154도36분48초 | 북위 18도10분41초 | 서경 159도14분8초 |
| 북위 24도21분49초 | 서경 155도51분13초 | 북위 17도31분17초 | 서경 158도56분55초 |
| 북위 24도41분47초 | 서경 156도27분27초 | 북위 16도54분6초 | 서경 158도30분29초 |
| 북위 24도57분33초 | 서경 157도22분17초 | 북위 16도25분49초 | 서경 157도59분25초 |
| 북위 25도13분41초 | 서경 157도54분13초 | 북위 15도59분57초 | 서경 157도17분35초 |
| 북위 25도25분31초 | 서경 158도30분36초 | 북위 15도40분37초 | 서경 156도21분6초 |
| 북위 25도31분19초 | 서경 159도9분47초 | 북위 15도37분36초 | 서경 155도22분16초 |
| 북위 25도30분31초 | 서경 159도54분21초 | 북위 15도43분46초 | 서경 154도46분37초 |
| 북위 25도21분53초 | 서경 160도39분53초 | 북위 15도55분32초 | 서경 154도13분5초 |
| 북위 25도0분6초 | 서경 161도38분33초 | 북위 16도46분27초 | 서경 152도49분11초 |
| 북위 24도40분49초 | 서경 162도13분13초 | 북위 17도33분42초 | 서경 152도0분32초 |
| 북위 24도15분53초 | 서경 162도43분8초 | 북위 18도30분16초 | 서경 151도30분24초 |
| 북위 23도40분50초 | 서경 163도13분0초 | 북위 19도2분47초 | 서경 151도22분17초 |
| 북위 23도3분20초 | 서경 163도32분58초 | 북위 19도34분46초 | 서경 151도19분47초 |
| 북위 22도20분9초 | 서경 163도44분41초 | 북위 20도7분42초 | 서경 151도22분58초 |
| 북위 21도36분45초 | 서경 163도46분3초 | 북위 20도38분43초 | 서경 151도31분36초 |
| 북위 20도55분26초 | 서경 163도37분44초 | 북위 21도29분9초 | 서경 151도59분50초 |
| 북위 20도13분34초 | 서경 163도19분13초 | 북위 22도6분58초 | 서경 152도31분25초 |
| 북위 19도39분3초 | 서경 162도53분48초 | 북위 22도32분54초 | 서경 153도0분33초 |
| 북위 19도9분43초 | 서경 162도20분35초 | | |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신설 2013.5.15>

캐리비안 배출규제해역 (제6조제2호의3 관련)

다음 좌표를 연결하는 측지선으로 둘러싸인 대서양 및 푸에르토리코연방의 캐리비안 해역과 미국 버진 제도(Virgin Islands) 연안에 위치한 해역

| 위도 | 경도 | 위도 | 경도 |
|--------------|--------------|--------------|--------------|
| 북위 17도18분37초 | 서경 67도32분14초 | 북위 18도21분57초 | 서경 64도40분60초 |
| 북위 19도11분14초 | 서경 67도26분45초 | 북위 18도21분51초 | 서경 64도40분15초 |
| 북위 19도30분28초 | 서경 65도16분48초 | 북위 18도21분22초 | 서경 64도38분16초 |
| 북위 19도12분25초 | 서경 65도06분08초 | 북위 18도20분39초 | 서경 64도38분33초 |
| 북위 18도45분13초 | 서경 65도00분22초 | 북위 18도19분15초 | 서경 64도38분14초 |
| 북위 18도41분14초 | 서경 64도59분33초 | 북위 18도19분07초 | 서경 64도38분16초 |
| 북위 18도29분22초 | 서경 64도53분51초 | 북위 18도17분23초 | 서경 64도39분38초 |
| 북위 18도27분35초 | 서경 64도53분22초 | 북위 18도16분43초 | 서경 64도39분41초 |
| 북위 18도25분21초 | 서경 64도52분39초 | 북위 18도11분33초 | 서경 64도38분58초 |
| 북위 18도24분30초 | 서경 64도52분19초 | 북위 18도03분02초 | 서경 64도38분03초 |
| 북위 18도23분51초 | 서경 64도51분50초 | 북위 18도02분56초 | 서경 64도29분35초 |
| 북위 18도23분42초 | 서경 64도51분23초 | 북위 18도02분51초 | 서경 64도27분02초 |
| 북위 18도23분36초 | 서경 64도50분17초 | 북위 18도02분30초 | 서경 64도21분08초 |
| 북위 18도23분48초 | 서경 64도49분41초 | 북위 18도02분31초 | 서경 64도20분08초 |
| 북위 18도24분11초 | 서경 64도49분00초 | 북위 18도02분03초 | 서경 64도15분57초 |
| 북위 18도24분28초 | 서경 64도47분57초 | 북위 18도00분12초 | 서경 64도02분29초 |
| 북위 18도24분18초 | 서경 64도47분01초 | 북위 17도59분58초 | 서경 64도01분04초 |
| 북위 18도23분13초 | 서경 64도46분37초 | 북위 17도58분47초 | 서경 63도57분01초 |
| 북위 18도22분37초 | 서경 64도45분20초 | 북위 17도57분51초 | 서경 63도53분54초 |
| 북위 18도22분39초 | 서경 64도44분42초 | 북위 17도56분38초 | 서경 63도53분21초 |
| 북위 18도22분42초 | 서경 64도44분36초 | 북위 17도39분40초 | 서경 63도54분53초 |
| 북위 18도22분37초 | 서경 64도44분24초 | 북위 17도37분08초 | 서경 63도55분10초 |
| 북위 18도22분39초 | 서경 64도43분42초 | 북위 17도30분21초 | 서경 63도55분56초 |
| 북위 18도22분30초 | 서경 64도43분36초 | 북위 17도11분36초 | 서경 63도57분57초 |
| 북위 18도22분25초 | 서경 64도42분58초 | 북위 17도04분60초 | 서경 63도58분41초 |
| 북위 18도22분26초 | 서경 64도42분28초 | 북위 16도59분49초 | 서경 63도59분18초 |
| 북위 18도22분15초 | 서경 64도42분03초 | 북위 17도18분37초 | 서경 67도32분14초 |
| 북위 18도22분22초 | 서경 64도38분23초 | | |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4] <신설 2025. 8. 12.>

지중해 배출규제해역(제6조제2항제2호의4 관련)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경계선과 유럽, 아프리카 및 아시아의 연안으로 둘러싸인 지중해 해역. 다만, 제4호에 따른 해역은 제외한다.

1. 스페인의 트라팔가 곶(북위 36도11분00초, 서경 6도02분00초)과 모로코의 스파르텔 곶(북위 35도48분00초, 서경 5도55분00초)을 연결하는 측지선으로 정하는 지브롤터 해협의 서쪽 입구
2. 터키의 메흐메치 곶(북위 40도03분, 동경 26도11분)과 쿤칼레 곶(북위 40도01분00초, 동경 26도12분00초)을 연결하는 측지선으로 정하는 차나칼레 해협의 남서쪽 입구
3. 수에즈 운하의 북쪽 입구
4. 다음 좌표를 연결하는 측지선으로 둘러싸인 해역

| 위도 | 경도 |
|--------------|--------------|
| 북위 31도29분00초 | 동경 32도16분00초 |
| 북위 31도29분00초 | 동경 32도28분48초 |
| 북위 31도14분00초 | 동경 32도32분62초 |
| 북위 31도14분00초 | 동경 32도16분00초 |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21. 6. 30.>

선박 안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분뇨의 배출해역별 처리기준 및 방법(제8조제1호 관련)

1. 제14조에 따라 분뇨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선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에서 분뇨를 배출할 수 있다.
 - 가. 영해기선으로부터 3해리를 넘는 거리에서 지방해양항만청장이 형식승인한 분뇨마쇄소독장치를 사용하여 마쇄하고 소독한 분뇨를 선박이 4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서서히 배출하는 경우. 다만,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400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에는 영해기선으로부터 3해리 이내의 해역에 배출할 수 있다.
 - 나.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넘는 거리에서 마쇄하지 아니하거나 소독하지 아니한 분뇨를 선박이 4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서서히 배출하는 경우.
 - 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형식승인한 분뇨처리장치를 설치·운전 중인 선박의 경우
2. 분뇨처리장치를 설치한 선박은 다음 각 목의 해역에서 분뇨를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 보호구역
 - 나.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에 따른 보호수면 및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
3. 분뇨마쇄소독장치 또는 분뇨저장탱크를 설치한 선박은 다음 각 목의 해역에서 분뇨를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 보호구역
 - 나.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에 따른 보호수면 및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
 - 다. 법 제15조에 따른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
 - 라.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 마. 「어촌·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
 - 바. 갑문 안의 수역
4. 제14조에 따른 분뇨오염방지설비 설치 대상선박 외의 선박은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해양에 분뇨를 배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류시설, 어장 등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해역에서 배출하여야 한다.

가. 부두에 접안 시

나. 항만의 안벽(부두 벽) 등 계류시설에 계류 시(계선부표에 계류한 경우도 포함되고, 계류시설에 계류된 선박에 계류한 선박도 포함한다)

5. 국제특별해역에서 배출하려는 경우에는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시추선 및 플랫폼은 항해 중이 아닌 상태에서 분뇨를 배출할 수 있다.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3] <개정 2020. 11. 19.>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해역별 처리기준 및 방법(제8조제2호 관련)

1.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가. 다음의 폐기물을 제외하고 모든 폐기물은 해상에 배출할 수 없다.

- 1) 음식찌꺼기
- 2) 해양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화물잔류물
- 3) 선박 내 거주구역에서 목욕, 세탁, 설거지 등으로 발생하는 중수(中水) [화장실 오수(汚水) 및 화물구역 오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 4)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활동 중 혼획(混獲)된 수산동식물(폐사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어업활동으로 인하여 선박으로 유입된 자연기원 물질(진흙, 퇴적물 등 해양에서 비롯된 자연상태 그대로의 물질을 말하며, 어장의 오염된 퇴적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나. 가목에서 배출 가능한 폐기물을 해상에 배출하려는 경우에는 영해기선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항해 중에 버리되, 다음의 해역에 버려야 한다.

- 1) 음식찌꺼기는 영해기선으로부터 최소한 12해리 이상의 해역. 다만, 분쇄기 또는 연마기를 통하여 25mm 이하의 개구(開口)를 가진 스크린을 통과할 수 있도록 분쇄되거나 연마된 음식찌꺼기의 경우 영해기선으로부터 3해리 이상의 해역에 버릴 수 있다.

2) 화물잔류물

- 가) 부유성 화물잔류물은 영해기선으로부터 최소한 25해리 이상의 해역
- 나) 가라앉는 화물잔류물은 영해기선으로부터 최소한 12해리 이상의 해역
- 다) 일반적인 하역방법으로 회수될 수 없는 화물잔류물은 영해기선으로부터 최소한 12해리 이상의 해역. 이 경우 국제협약 부속서 5의 부록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류된 물질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 라) 화물창을 청소한 세정수는 영해기선으로부터 최소한 12해리 이상의 해역. 다만, 다음의 조건에 만족하는 것으로서 해양환경에 해롭지 아니한 일반 세제를 사용한 경우로 한정한다.
 - (1) 국제협약 부속서 제3장의 적용을 받는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
 - (2) 발암성 또는 돌연변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
- 3) 해수침수, 부패, 부식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화물은 국제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4) 선박 내 거주구역에서 발생하는 중수는 아래 해역을 제외한 모든 해역에서 배출할 수 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

역

나)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에 따른 보호수면 및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

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1조에 따른 지정해역 및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주변해역

5)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활동 중 혼획된 수산동식물 또는 어업활동으로 인하여 선박으로 유입된 자연기원물질은 같은 법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 어업활동을 하는 수면에 배출할 수 있다.

6) 동물사체는 국제해사기구에서 정하는 지침을 고려하여 육지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해역에 배출할 수 있다.

다. 폐기물이 다른 처분요건이나 배출요건의 적용을 받는 다른 배출물과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폐기물의 처분요건이나 배출요건을 적용한다.

라.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는 항만에 정박 중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폐기물을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마.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제6장 1-1.2규칙에서 정의된 고체산적화물 중 곡물을 제외한 화물은 국제협약 부속서 5의 부록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류되어야 하며, 화주는 해당 화물이 해양환경에 유해한지 여부를 공표해야 한다.

2. 폐기물의 처분에 관한 특별요건

육지로부터 12해리 이상 떨어진 위치에 있는 고정되거나 부동하는 플랫폼과 이들 플랫폼에 접안되어 있거나 그로부터 500m 이내에 있는 다른 모든 선박에서 음식찌꺼기를 해양에 버릴 때에는 분쇄기 또는 연마기를 통하여 분쇄 또는 연마한 후 버려야 한다. 이 경우 음식찌꺼기는 25mm 이하의 개구를 가진 스크린을 통과할 수 있도록 분쇄되거나 연마되어야 한다.

3. 국제특별해역 및 제12조의2에 따른 극지해역 안에서의 폐기물 처분에 관하여는 국제협약 부속서 5에 따른다.

4. 길이 12m 이상의 모든 선박은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요건을 승무원과 여객에게 한글과 영문(국제항해를 하는 선박으로 한정한다)으로 작성·고지하는 안내표시판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5.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과 최대승선인원 15명 이상의 선박은 선원이 실행할 수 있는 폐기물관리계획서를 비치하고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관리계획서에는 선상 장비의 사용방법을 포함하여 쓰레기의 수집, 저장, 처리 및 처분의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 비고

"화물잔류물"이란 목재, 석탄, 곡물 등의 화물을 양하(揚荷)하고 남은 최소한의 잔류물을 말한다.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4] <개정 2015.1.8.>

화물유가 섞인 선박평형수, 세정수, 선저폐수의 배출기준 등
(제10조 관련)

1. 화물유가 섞인 선박평형수, 세정수, 선저폐수의 배출기준

유조선에서 화물유가 섞인 선박평형수, 화물창의 세정수 및 화물펌프실의 선저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한다.

가. 항해 중에 배출할 것

나. 기름의 순간배출률이 1해리당 30ℓ 이하일 것

다. 1회의 항해 중(선박평형수를 실은 후 그 배출을 완료할 때까지를 말한다)의 배출총량이 그 전에 실은 화물총량의 3만분의 1(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인도된 선박으로서 유조선의 경우에는 1만5천분의 1)이하일 것

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기선으로부터 5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배출할 것

마. 제15조에 따른 기름오염방지설비의 작동 중에 배출할 것

2. 선박평형수의 세정도

유조선의 화물창으로부터 선박평형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한다.

가. 정지 중인 유조선의 화물창으로부터 청명한 날 맑고 평온한 해양에 선박평형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유막이 해면 또는 인접한 해안선에 생기지 아니하거나 유성찌꺼기(Sludge) 또는 유성혼합물이 수중 또는 인접한 해안선에 생기지 아니하도록 화물창이 세정되어 있을 것

나. 선박평형수용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또는 평형수농도감시장치를 통하여 선박평형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로 측정된 배출액의 유분함유량이 0.0015%[15pp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분리평형수 및 맑은평형수의 배출방법

가. 분리평형수 및 맑은평형수는 해당 선박의 흘수선 위쪽에서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평형수 및 맑은평형수의 표면에서 기름이 관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흘수선 아래쪽에서 배출할 수 있다.

나. 가목 단서에 따라 흘수선 아래쪽에서 배출하는 경우 항만 및 해양터미널 외의 해역에서는 중력에 따른 배출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유성혼합물 등의 저장 또는 처리

가.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유성찌꺼기 및 유성혼합물은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저장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 1) 기관구역의 선저폐수는 선저폐수저장장치에 저장한 후 배출관장치를 통하여 오염물질저장시설 또는 해양오염방제업·유청청소업(이하 “저장시설등”이라 한다)의 운영자에게 인도할 것. 다만, 기름여과장치가 설치된 선박의 경우에는 기름여과장치를 통하여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 2) 유성찌꺼기(Sludge)는 유성찌꺼기탱크에 저장하되, 별표 8의 기술기준에 따른 유성찌꺼기탱크용량의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항 전에 유성찌꺼기 전용펌프(총톤수 150톤 미만의 유조선, 총톤수 400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유조선 외의 선박과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의 경우에는 유성찌꺼기전용펌프 외의 펌프를 사용할 수 있다)와 배출관장치를 통하여 저장시설등의 운영자에게 인도할 것. 다만, 소각설비가 설치된 선박의 경우에는 해상에서 유성찌꺼기를 소각하여 처리할 수 있다.
- 3) 유조선의 화물구역에서 발생하는 유성혼합물은 법 제2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해양에 배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 안에 저장할 것

나. 기관구역의 선저폐수 또는 유성찌꺼기를 역류방지밸브가 설치된 이송관을 통하여 혼합물탱크로 이송하여 저장하는 유조선의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가목3)에 따른 유성혼합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흘수선 위쪽에서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혼합물탱크로부터 배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흘수선 아래쪽에서 배출할 수 있다.

- 1) 탱크 안에서 물과 기름이 분리되어 저장되고 배출 전에 유수경계면 검출기로 유수경계면을 조사한 결과 기름에 따른 오염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중력으로 배출하는 경우
- 2)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인도된 선박으로서 유조선에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인정하는 파트플로우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작동하여 배출하는 경우

라. 제20조에 따라 화물창 또는 연료유탱크에 실은 선박평형수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적합한 경우 외에는 이를 선박 안에 저장한 후 저장시설등의 운영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5] <개정 2021. 12. 23.>

유해액체물질의 배출해역, 예비세정방법 및 배출방법(제11조 관련)

1. 정의

- 가. "산적화학물코드(BCH 코드)"란 국제해사기구의 해양환경보호위원회가 결의 MEPC.20(22)로 채택한 「위험화학물을 산적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코드」를 말한다.
- 나. "국제산적화학물코드(IBC 코드)"란 국제해사기구의 해양환경보호위원회가 결의 MEPC 19(22)로 채택한 「위험화학물을 산적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코드」를 말한다.
- 다. "액체물질"이란 37.8℃에서 증기압이 0.28MPa(절대압력)을 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라. "PPM" 이라함은 ml/m^3 를 말한다.
- 마. "비응고성 물질"이란 응고성 물질이 아닌 유해액체물질을 말한다.
- 바. "잔류물"이란 폐기물로 남은 유해액체물질을 말한다.
- 사. "지속성 부유물"이란 다음의 성질을 모두 가진 물질로서 유막(slick)을 형성하는 유해액체물질을 말한다.
- 1) 밀도가 해수의 밀도(20℃에서 1025kg/m^3) 이하일 것
 - 2) 증기압이 0.3kPa 이하일 것
 - 3) 용해도가 액체 상태에서 0.1% 이하이거나 고체 상태에서 10% 이하일 것
 - 4) 동점도가 20℃에서 10cSt를 초과할 것

2. 적용

- 가. 이 표는 유해액체물질을 산적운송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한다.
- 나. 기름을 케미컬탱커의 화물창에 적재하는 경우에는 기름오염방지설비에 관한 규정도 함께 적용한다.

3. 설계, 구조, 설비 및 운영

- 가. 국제산적화학물코드 제17장의 유해액체물질을 산적 운송하도록 승인된 선박의 설계, 구조, 설비 및 운영은 그 유해액체물질이 아무 규제 없이 해양으로 배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각 다음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1) 케미컬 탱커가 1986년 7월 1일 이후에 건조된 경우에는 국제산적화학물코드
 - 2) 다음 선박에 대하여는 산적화학물코드 1.7.2항
 - 가) 1973년 11월 2일 이후에 건조계약이 이루어지고 1986년 7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나) 1983년 7월 1일 이후 1986년 7월 1일 전의 기간 중에 건조된 선박으로서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

3) 다음 선박에 대하여는 산적화학물코드 1.7.3항

가) 건조 계약이 1973년 11월 2일 전에 이루어진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나) 1983년 7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으로서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

나. 국제산적화학물코드 제17장의 유해액체물질을 산적 운송하도록 승인된 케미컬탱커 또는 액화가스운반선 외의 선박(일반건화물선에서의 식물성기름을 운송하는 경우)은 아무 통제 없이 유해액체물질이 해양으로 배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해사기구가 개발한 지침(결의서 A.673(16) 및 결의서 MEPC.120(52))에 따라야 한다.

4. 펌핑, 배관, 양하설비 및 혼합물 탱크

가. 1986년 7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은 X류 물질 또는 Y류 물질을 운송하도록 승인된 각 탱크에 그 탱크 및 관련 배관의 잔류물의 양이 300ℓ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펌핑 및 배관장치를 갖추어야 하고, Z류 물질을 운송하도록 승인된 각 탱크는 그 탱크 및 관련 배관에 잔류물의 양이 900ℓ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펌핑 및 배관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마목에 따라 화물창, 펌프 및 관련 배관 안의 잔류량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1986년 7월 1일 이후 2007년 1월 1일 전의 기간에 건조된 선박은 X류 물질 또는 Y류 물질을 운송하도록 승인된 각 탱크에 그 탱크 및 관련 배관의 잔류물의 양이 100ℓ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펌핑 및 배관장치를 갖추어야 하고, Z류 물질을 운송하도록 승인된 각 탱크는 그 탱크 및 관련 배관에 잔류물의 양이 300ℓ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펌핑 및 배관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마목에 따라 화물창, 펌프 및 관련 배관 안의 잔류량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2007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선박은 X류 물질, Y류 물질 또는 Z류 물질을 운송하도록 승인된 각 탱크에 그 탱크 및 관련 배관의 잔류물의 양이 75ℓ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펌핑 및 배관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마목에 따라 화물창, 펌프 및 관련 배관 안의 잔류량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가목 및 나목에 따른 Z류 물질의 펌핑 및 배관장치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2007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케미컬탱커 외의 선박에 대하여는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하는 잔류물 최대 요구량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탱크가 실행 가능한 최대한 정도까지 배출하였을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마. 화물창, 펌프 및 관련 배관 안의 잔류량 평가는 다음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실시한다.

- 1) 측정된 양은 스트리핑량이라 하고, 각 탱크의 스트리핑량은 선박의 지침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 2)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하나의 탱크에 대한 스트리핑량을 유사하게 설계된 다른 탱크(펌핑장치가 유사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인정하는 탱크로 한정한다)의 스트리핑량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설계기준 및 성능시험

- 가) 화물펌핑장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탱크 및 관련 배관의 잔류물의 최대 요구량 요건에 부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나) 화물펌핑장치의 펌핑 성능시험을 할 때에는 물을 시험매체로 사용하여 해당 장치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잔류물의 최대 요구량 요건에 관하여는 탱크당 50ℓ의 허용오차를 인정한다.

4) 성능시험의 조건과 방법

가) 시험 조건

- (1) 선박의 종경사 및 횡경사는 드레인이 흡입구 쪽으로 양호하게 흐르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 중 종경사는 선미종경사(선미쪽으로 기울어진 정도) 3°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박 횡경사는 1°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시험을 위하여 결정된 종경사 및 횡경사는 기록하여야 한다.
- (3) 시험 중 화물창의 화물양하 매니폴드(여러 개의 가지관)에서 100kPa 이상의 배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그림 1 및 2 참조)
- (4) 시험을 완료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탱크별로 기록하여야 한다.

나) 시험방법

- (1) 시험할 화물창 및 그 관련 배관은 깨끗하게 하고 사람이 당해 화물창 안으로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 화물양하 절차의 정상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깊이까지 화물창에 물을 채운다.
- (3) 제안된 절차에 따라 화물창 및 그 관련 배관으로부터 배출 및 스트리핑을 행한다.

(4) 화물창 및 관련 배관에 잔존하고 있는 물의 양을 측정하기 위하여 계량논금이 있는 용기에 모으되, 잔류수는 다음의 각 장소로부터 모아야 한다.

(가) 화물창의 흡입구 및 그 근방

(나) 화물창 바닥 중에 물이 고인 모든 장소

(다) 화물펌프의 저위치의 드레인

(라) 매니폴드 밸브까지에 있어서 화물창 관련 배관의 모든 저위치의 드레인

(5) (4)에 따라 모아진 전 수량이 화물창의 스트리핑 량으로 결정된다.

(6) 어떤 탱크군이 공통의 펌프 또는 배관을 공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조작상 제한이 그 선박의 검인받은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용장치에 관련된 잔류량을 탱크간에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다.

"이 탱크군에 해당하는 탱크의 연속적인 양하를 위하여 그 펌프 또는 배관은 이 탱크군의 모든 탱크가 양하될 때까지 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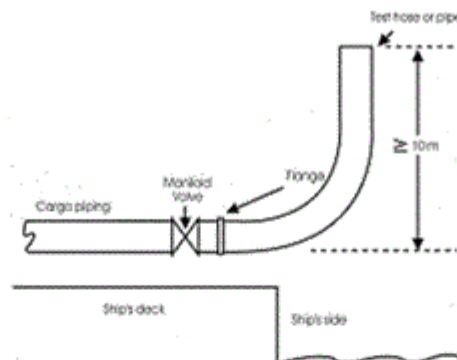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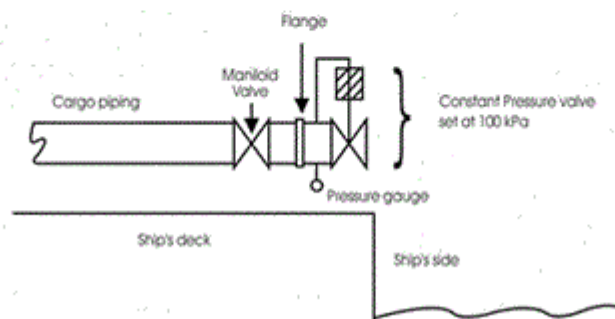


그림 2

바. X류 물질, Y류 물질 또는 Z류 물질을 운송하도록 승인받은 선박은 수면하 배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2007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으로서 Z류 물질을 운송하도록 승인받은 선박은 제외한다.

사. 수면하 배출구는 선저폐수 만곡부(彎曲部: 굽은 구간) 근처의 화물구역 안에 있어야 하며, 선박의 해수흡입구로 잔류물과 물의 혼합물이 재흡입되는 것을 피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아. 수면하 배출구는 해양으로 배출된 잔류물과 물의 혼합물이 선박의 경계층을 통과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자. 배출이 선체외판에 대하여 수직이 아닌 각도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별표 16 제3호나목4)의 공식에서 Qd 대신에 선체외판에 수직적인 Qd의 요소로 대체하여 최소지름을 산정하여야 한다.

차. 혼합물 탱크

화물창은 혼합물탱크로 사용할 수 있다.

5. 유해액체물질의 배출기준

유해액체물질, 선박평형수, 탱크 세정수의 잔류물 또는 이러한 물질을 함유하는 혼합물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한다.

가. 배출규정

1) X류 물질, Y류 물질, Z류 물질, 잠정평가물질의 잔류물 또는 이들 물질을 함유하는 선박평형수, 탱크세정수, 그 밖의 이들 혼합물은 이 표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2) 이 표에 따라 예비세정 또는 배출절차가 시행되기 전에 관련 탱크는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최대한 비워야 한다.

3) 잠정평가물질, 평가되지 아니한 물질 또는 이들 물질을 함유하는 선박평형수, 탱크세정수, 그 밖의 이들 혼합물은 해양에 배출할 수 없다.

나. 배출기준

1) 이 표에 따른 X류 물질, Y류 물질, Z류 물질, 잠정평가물질의 잔류물 또는 이들 물질을 함유하는 선박평형수, 탱크세정수, 그 밖의 이들 혼합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자항선은 7노트 이상, 비자항선은 4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항해 중일 것

나) 수면하 배출구를 통하여 설계된 최대 배출률 이하로 배출할 것

다)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상 떨어진 수심 25m 이상의 장소에서 배출할 것. 다만,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리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2007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에 대하여, Z류 물질, 잠정평가물질(Z류

물질로 잠정 평가된 물질을 말한다)의 잔류물 또는 이들 물질을 함유하는 선박평형수, 탱크세정수 또는 그 밖의 이들 혼합물은 수면하 배출 외의 방법으로 배출할 수 있다.

다. 화물 잔류물의 통풍

탱크로부터 화물잔류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통풍절차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야 하며, 통풍절차가 완료된 후에 탱크에 유입된 물에 대하여는 이 표의 배출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20℃에서 5kPa 이상의 증기압을 가지는 물질의 화물 잔류량은 통풍에 의하여 화물창으로부터 제거할 수 있다.
- 2) 유해액체물질의 잔류물을 탱크로부터 통풍하기 전에 화물의 인화성 및 유해성에 관한 안전상의 위험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면에 대하여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의 화물창에 대한 운영요건, 국제산적화학물코드, 산적화학물코드 및 국제해운회의소(ICS) 탱커안전지침(화학물)의 통풍절차를 참조하여야 한다.
- 3) 항만당국도 화물창 통풍에 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 4) 탱크로부터 화물잔류물의 통풍절차는 다음과 같다.
 - 가) 배관 안의 화물을 드레인시키고 다시 통풍장치에 의하여 액체를 제거하여야 한다.
 - 나) 당해 탱크의 잔류물의 증발이 촉진되도록 횡경사 및 종경사는 가능한 최소한도까지 조절하여야 한다.
 - 다) 탱크바닥까지 도달할 수 있는 공기분사를 발생하는 통풍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림 3은 주어진 깊이의 탱크를 통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통풍장치의 적합성을 평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 라) 통풍장치는 당해 탱크의 섬프 또는 흡입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탱크 개구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 마) 가능하면 통풍장치는 공기분사가 당해 탱크의 섬프 또는 흡입점 쪽으로 향하도록 배치하고, 탱크 구조부재에 공기 분사가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 바) 통풍은 당해 탱크의 잔류액이 눈으로 보아서 없어질 때까지 계속하되, 맨눈 검사 또는 그와 동등한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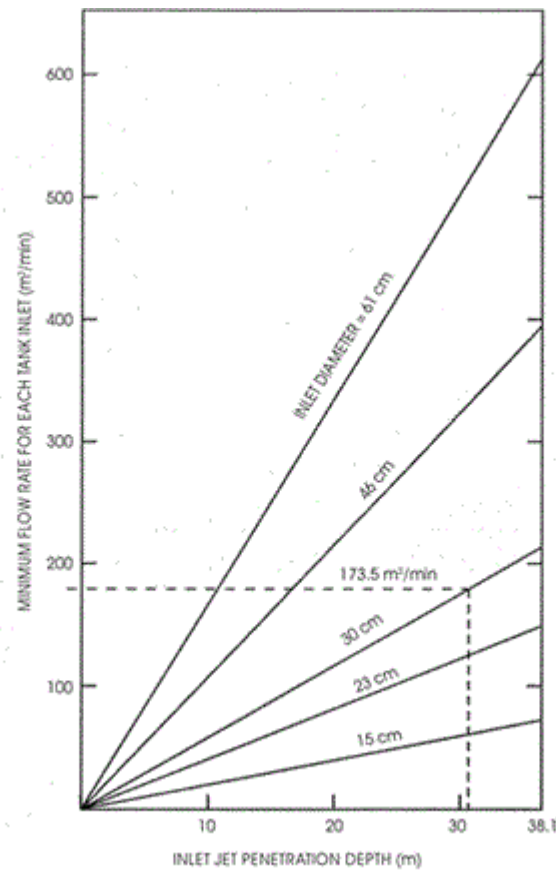


그림 3 분사관통 깊이를 함수로 한 최저유량(분사관통 깊이는 탱크깊이에 대응한다)

라. 예비 세정의 면제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확인되면 예비세정을 면제할 수 있다.

- 1) 양하된 탱크는 이전의 화물과 동등한 물질 또는 혼합하여도 화학반응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다른 물질로 다시 적하하여야 하며, 그 탱크는 적하 전에 세정하거나 선박평형수를 적재하지 아니할 것
- 2) 양하된 탱크는 항해 중에 세정하거나 선박평형수를 적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표에 따른 예비세정은 서면으로 수용시설의 적합성이 확인된 항구에서 실시할 것
- 3) 화물 잔류물은 다목에 따른 통풍절차에 따라 제거할 것

마. 세정제 또는 첨가제의 사용

- 1) 광물유 또는 염소처리 용제와 동등한 물 외의 세정제가 탱크를 세정하기 위하여 물 대신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의 예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고, 그 세정제가 화물로서 운송되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을 그

세정제에 적용하여야 하며, 그러한 세정제의 사용을 포함한 탱크세정절차는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에 명확하게 적혀야 한다.

- 2) 탱크세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량의 세정첨가제(세제)를 물에 첨가하는 경우 X류 물질 성분을 갖는 첨가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쉽게 생분해되며 X류 물질이 10% 미만인 세정첨가제는 제외한다.

바. X류 물질 잔류물의 배출

가목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가) X류 물질이 양화된 탱크는 선박이 양하항을 떠나기 전에 예비세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수용시설로 배출하는 유출액 중 당해물질 농도가 채취한 유출물의 시료 분석을 통하여 무게로 0.1% 이하가 될 때까지 발생 잔류물을 수용시설에 배출하여야 하고, 요구되는 농도 수준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탱크 세정수는 탱크가 빌 때까지 수용시설에 배출하여야 하며, 유해액체물질기록부에 적절히 기록한 후 선박검사관의 이서를 받아야 한다.

나) 가)의 조치 후에 탱크로 유입된 물은 나목의 배출기준에 따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다) 기항국인 당사국 정부는 배출물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선박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에서 요구하는 농도를 얻는 것과 동등한 대체절차를 허용할 수 있다.

(1) 자목에 따른 절차에 따라 탱크를 예비세정할 것

(2) 유해액체물질기록부에 적절히 기록하고 선박검사관이 이서할 것

사. Y류 물질 및 Z류 물질의 잔류물의 배출

- 1) 가목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가) Y류 물질 또는 Z류 물질의 잔류물 배출절차는 나목의 배출기준에 따라야 한다.

나) Y류 물질 또는 Z류 물질의 양하가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에 따라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박이 양하항을 떠나기 전에 예비세정을 실시하되, 예비세정의 결과로 발생하는 탱크세정수는 양하항 또는 서면으로 수용시설의 적합성이 확인된 항구에서 수용시설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표에 명시된 양까지 선박으로부터 화물잔류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선박검사관이 인정하는 대체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고점성 물질 또는 응고성 물질인 Y류 물질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자목에 따른 절차에 따라 탱크를 예비세정하여야 한다.

(2) 예비세정 중 발생한 잔류물과 물의 혼합물은 탱크가 빌 때까지 수용

시설에 배출하여야 한다.

- (3) 그 후에 탱크로 유입된 물은 나목의 배출기준에 따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라) 제1호사목의 지속성 부유물 중 Y류 지속성 부유물로서 점도가 20°C 에서 $50\text{mPa}\cdot\text{s}$ 이상이거나 녹는점이 0°C 이상이면서 「위험화학품 산적 운송선박의 구조 및 설비를 위한 국제협약」 제17장의 영문 o란의 16.2.7에 해당하는 지속성 부유물질인 경우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2 제13.9규칙에서 정한 지역 내에서의 배출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1) 자목에 따른 절차에 따라 탱크를 예비세정해야 한다.
- (2) 예비세정과정에서 발생한 잔류물과 물의 혼합물은 해당 탱크가 비워질 때까지 양하항의 육상시설에 배출해야 한다.
- (3) 예비세정과정 이후에 탱크로 유입된 물은 나목의 배출기준에 따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2) 선박평형수의 주입과 배출에 대한 운항상 요건

가) 양하 후 또는 예비세정 후에는 화물창에 선박평형수를 채울 수 있으며, 선박평형수의 배출절차는 나목에 따른다.

나) 선박평형수가 전에 운송한 물질의 0.0001% [1ppm] 미만을 포함할 정도로 세정된 화물창에 유입된 선박평형수는 배출율, 선박의 속력 및 배출구의 위치와 관계 없이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 (1)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상 떨어져 있고 수심이 25m 이상인 곳에 배출할 것
- (2) 자목에 따라 예비세정이 시행될 것
- (3) 그 후에 탱크가 1994년 7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의 탱크에 대하여는 세정기의 완전한 주기로 세정되거나 세정도의 최소량을 구하는 공식에서 $k=1.0$ 으로 계산한 양 이상의 물로써 세정될 것

아. 남극해역에서의 배출

- 1) 남극해역이란 남위 60도 이남해역을 말한다.
- 2) 남극해역에서 유해액체물질 또는 이러한 물질을 포함하는 혼합물은 해양에 배출할 수 없다.

자. 예비세정절차

1) 1994년 7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

가) 비응고성 물질에 대한 예비세정절차

- (1) 탱크는 충분히 높은 수압에서 작동되는 회전식 물분사에 의하여 세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X류 물질에 있어서는 세정기가 탱크의 모든 표면이 세정될 수 있도록 여러 위치에서 작동되어야 하며, Y류 물질에 있어

서는 세정기를 1개소 이상의 장소에서 작동하여야 된다.

- (2) 세정 중에는 연속적으로 혼합물을 배출하고 혼합물이 흡입구 쪽으로 잘 흐르도록 하여 탱크 안의 물의 양을 최소화하거나 세정과 세정의 사이에 탱크를 완전히 스트리핑하면서 세정 절차를 3회 반복하여야 한다.
- (3) 20℃에서 50mPa·s 이상의 점도를 가지는 물질은 그 물질의 특성상 세정효과를 저하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60℃ 이상의 온수로 세정하여야 한다.
- (4) 사용되는 세정기는 다음 표에서 정한 이상으로 순환시켜야 하며, 세정기의 순환은 탱크세정기의 두개의 연속적인 동일한 방위 사이(360도 회전)의 주기로서 정의된다.

| 화물의 분류 | 세정기의 순환 수 | |
|--------|-----------|--------|
| | 비응고성 물질 | 응고성 물질 |
| X류 물질 | 1 | 2 |
| Y류 물질 | 1/2 | 1 |

- (5) 세정 후에는 배관, 펌프 및 필터를 세정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 동안 세정기의 작동을 계속하여야 하며, 육상 수용시설로의 배출은 탱크가 빌 때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나) 응고성 물질에 대한 예비세정절차

- (1) 화물 양하 후에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탱크를 세정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세정 전에 탱크를 가열하여야 한다.
- (2) 해치 및 맨홀의 잔류물은 가능하면 예비세정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 (3) 탱크의 모든 표면이 세정될 수 있도록 하는 위치에서 충분히 높은 수압으로 작동되는 회전식 물분사장치에 의하여 탱크를 세정하여야 한다.
- (4) 세정 중에는 연속적으로 혼합물을 배출하고 흡입구 쪽으로 잘 흐르도록 하여 탱크 안의 물의 양을 최소화하거나 세정과 세정의 사이에 탱크를 완전히 스트리핑하면서 세정절차를 3회 반복하여야 한다.
- (5) 탱크는 그 물질의 특성상 세정효과를 저하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60℃ 이상의 온수로 세정하여야 한다.
- (6) 사용되는 세정기는 가)(4)의 표에서 정한 수 이상으로 순환시켜야 하며, 세정기의 순환은 탱크세정기의 두개의 연속적인 동일한 방위 사이(360도 회전)의 주기로서 정의된다.
- (7) 세정 후에는 배관, 펌프 및 필터를 세정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동안 세정기의 작동을 계속하여야 한다.

2) 1994년 7월 1일 이후 건조된 선박(1994년 7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에

대해서도 다음의 절차를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가) 세정제를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비응고성 물질에 대한 예비세정절차

- (1) 탱크는 충분히 높은 수압에서 작동되는 회전식 물분사에 의하여 세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X류 물질에 있어서는 세정기가 탱크의 모든 표면이 세정될 수 있도록 여러 위치에서 작동되어야 하며, Y류 물질에 있어서는 세정기를 1개소 이상의 장소에서 작동하여야 한다.
- (2) 세정 중에는 연속적으로 혼합물을 배출하고 흡입구 쪽으로 잘 흐르도록 하여 탱크안의 액량을 최소화하거나 세정과 세정의 사이에 탱크를 완전히 스트리핑하면서 세정절차를 3회 반복하여야 한다.
- (3) 20℃에서 50mPa·s 이상의 점도를 가지는 물질은 그 물질의 특성상 세정효과를 저하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60℃ 이상의 온수로 세정하여야 한다.
- (4) 세정수의 사용량은 라)(1)에 규정된 양 또는 라)(2)에 따라 결정된 양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 (5) 예비세정 후에는 탱크 및 배관이 완전히 스트리핑하여야 한다.

나) 세정제를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응고성 물질에 대한 예비세정절차

- (1) 화물 양하 후에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탱크를 세정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세정 전에 탱크를 가열하여야 한다.
- (2) 해치 및 맨홀의 잔류물은 가능하면 예비세정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 (3) 탱크의 모든 표면이 세정될 수 있도록 하는 위치에서 충분히 높은 수압으로서 작동되는 회전식 물분사에 의하여 탱크를 세정하여야 한다.
- (4) 세정 중에는 연속적으로 혼합물을 배출하고 흡입구 쪽으로 잘 흐르도록 하여 탱크안의 수량을 최소화하거나 세정과 세정의 사이에 탱크를 완전히 스트리핑하면서 세정 절차를 3회 반복하여야 한다.
- (5) 탱크는 그 물질의 특성상 세정효과를 저하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60℃ 이상의 온수로 세정하여야 한다.
- (6) 세정수의 사용량은 라)(1)에 규정된 양 또는 라)(2)에 따라 결정된 양 이상이어야 한다.
- (7) 예비세정 후에는 탱크 및 배관을 완전히 스트리핑하여야 한다.

다) 세정제를 재활용하는 예비세정절차

- (1) 세정 양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탱크안의 예상 잔류량, 세정제의 특성 그리고 초기세척 또는 행굼의 선택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를 하여야 하며, 충분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세정제 안의 화물잔류량에 대한 계산농도가 공식 스트리핑 계획량의 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재활용되는 세정제는 동일한 또는 비슷한 물질이 적재된 탱크의 세정

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3) 연속적으로 세정을 하기에 충분한 양의 세정제를 해당 탱크 또는 세정될 탱크에 대하여 추가로 사용하여야 한다.
- (4) 탱크의 모든 표면이 충분히 높은 수압에서 작동되는 회전식분사에 의하여 세정되어야 하며, 세정제의 재활용은 세정될 탱크 안 또는 혼합물 탱크와 동등한 다른 탱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5) 누적된 처리량이 라)(1)에 규정된 양 또는 라)(2)에 따라 결정된 처리량을 상회할 때까지 세정을 계속하여야 한다.
- (6) 응고성 물질과 20℃에서 50mPa·s 이상의 점도를 가지는 물질은 그 물질의 특성상 세정효과를 저하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60℃ 이상의 온수로 세정하여야 한다.
- (7) 세정제를 재활용한 탱크세정을 5)에 규정된 정도까지 완료한 후에는 탱크세정제를 배출하고 탱크를 완전히 스트리핑하여야 하며, 계속적으로 수용시설에 배수 및 배출을 하면서 청정세제를 이용하여 탱크를 행구어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 탱크바닥을 포함하여 행구어야 하며, 배관, 펌프 그리고 필터까지 충분히 씻어내어야 한다.

라) 예비세정에 사용될 세정수의 최소량

- (1) 예비세정에 사용될 세정수의 최소량은 다음 공식에 따라 정한다.

$$Q=k(15r^{0.8}+5r^{0.7}V/1000)$$

Q: 요구되는 최소량(m³)

r: 각 탱크의 잔류량(m³), 실제 스트리핑 성능시험에서 증명된 값이어야 하나 그 값은 용적 500m³ 이상의 탱크당 0.100m³, 용적 100m³ 이하의 탱크당 0.040m³ 이상이어야 한다. 탱크의 크기가 100m³에서 500m³사이인 경우 선형보간법에 따라 구하여진다. 다만, X류 물질의 경우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에 따른 스트리핑 시험에 따라 결정하거나 0.9m³의 값으로 한다.

V: 탱크 용적(m³)

k: 다음의 값을 가지는 계수

X류 물질, 비응고성 물질, 저점도 물질: 1.2

X류 물질, 응고성 물질 또는 고점도 물질: 2.4

Y류 물질, 비응고성 물질, 저점도 물질: 0.5

Y류 물질, 응고성 물질 또는 고점도 물질: 1.0

다음의 표는 "k"인수의 값을 1로 한 공식에서 계산한 것이며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참조할 수 있다.

| 스트리핑량
(m³) | 탱크용적(m³) | | |
|---------------|----------|------|------|
| | 100 | 500 | 3000 |
| ≤0.04 | 1.2 | 2.9 | 5.4 |
| ≤0.10 | 2.5 | 2.9 | 5.4 |
| ≤0.30 | 5.9 | 6.8 | 12.2 |
| ≤0.90 | 14.3 | 16.1 | 27.7 |

- (2) 예비세정수를 (1)에 규정된 것보다 적게 사용하려면 관련 확인시험을 실시한 후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된 예비세정수의 사용량에 따라 다른 예비세정조건에 적용되는 k값을 조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3) 모든 선박

가) 사목1)라)에 따른 지속성 부유물질에 대한 예비세정절차

- (1) 20°C에서 50 mPa·s 이상의 점도나 0°C 이상의 녹는점을 갖는 지속성 부유물질은 예비세정의 목적상 응고성물질 또는 고(高)점성물질로 취급되어야 한다.
- (2) 예비세정 과정에서 소량의 첨가제를 사용하는 것이 화물잔류물 제거에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기 전에 해당 배출시설 관계자와 협의해야 한다.

6. 유해액체물질기록부

가. 선박은 별지 제4호서식의 유해액체물질기록부를 공식항해일지의 일부로서 또는 그 밖의 형식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나. 유해액체물질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관련된 작업 후에 즉시 기록하여야 한다.

다. 유해액체물질 또는 그러한 물질을 함유하는 혼합물의 배출사고 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배출의 경우 배출의 상황 및 이유를 유해액체물질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라. 각 기재사항에는 당해 작업의 책임자가 서명하고 각 면에는 선장이 서명하여야 하며, 산적유해액체물질에 관한 국제오염방지증서 등을 비치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유해액체물질기록부의 기재는 최소한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은 한글로 기재할 수 있다.

마. 유해액체물질기록부는 쉽게 검사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승무원이 없는 피예인선의 경우 외에는 선박 안에 보관하여야 한다.

바. 유해액체물질기록부는 최후의 기재가 행하여진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사.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박이 우리나라의 항구에 있는 동안은 그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유해액체물질기록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당해 선박의 선장에게 원본과 같다는 표시와 서명이 된 사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7. 배출규제 조치

가. 선박검사관은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의 요건에 따라 작업이 실시되었음을 확인하였거나 예비세정을 면제한 경우에는 유해액체물질기록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나. 산적유해액체물질을 운송하는 선박의 선장은 제5호의 작업이 행하여질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라 유해액체물질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 X류 물질을 운송하는 탱크는 제5호바목에 따라 예비 세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액체물질기록부에 기록한 후 선박검사관의 이서를 받아야 한다.

라. 선박검사관은 선박에 대하여 유해액체물질의 농도를 계측하는 것이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유해액체물질기록부에 다음 사항이 확인되어 기재된 경우에는 제5호바목다)의 대체조치를 인정할 수 있다.

- 1) 탱크, 관련 펌프 및 배관계통이 비었다는 사실
- 2) 제5호자목에 따라 예비세정이 행하여 졌다는 사실
- 3) 그 예비세정으로 발생하는 탱크세정수가 수용시설에 배출되었으며 탱크가 비어 있다는 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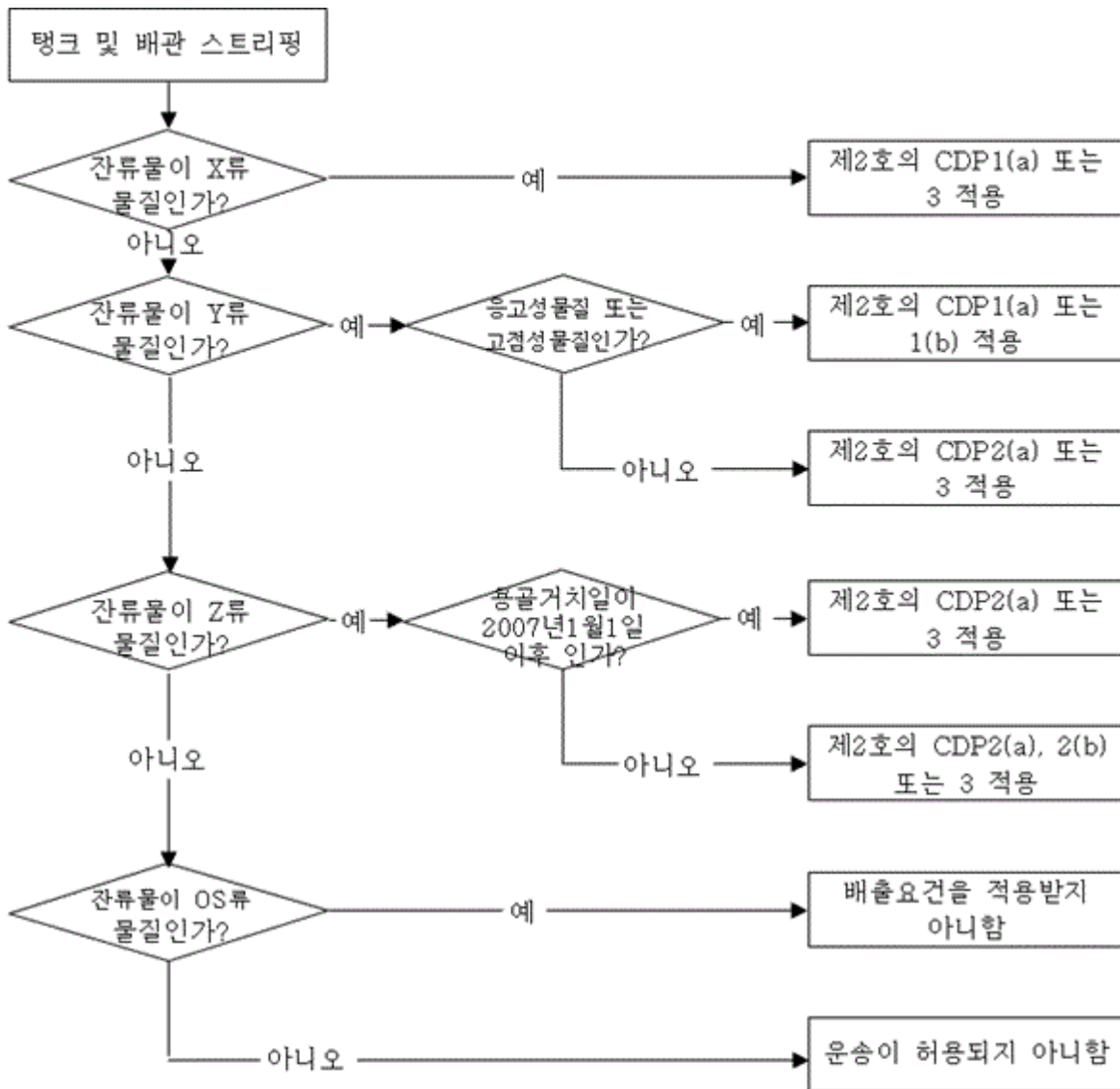
마. 기항국인 당사국 정부는 선장의 요청에 따라 제5호라목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예비세정의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바. 마목에 따른 예비세정의 면제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만 인정할 수 있으며, 면제하는 경우에는 유해액체물질기록부에 관련 사실을 기록한 후 선박검사관의 이서를 받아야 한다.

사. 선박검사관은 제4호마목의 잔류량 평가에 적합하게 양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잔류량 평가에 적합하도록 하는 대체조치를 취할 수 있다.

8. 유해액체물질의 분류에 따른 적용방법

가. 잔류물의 분류방법



비고

- 1) 위 흐름도는 선박의 선령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 2) 모든 해양에서의 배출은 제5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3) 유해액체물질이거나 그 유해액체물질을 포함하는 혼합물은 남극해역 내 해양에서 배출할 수 없다.
- 4) Y류 지속성 부유물로서 점도가 20°C에서 50mPa·s 이상이거나 녹는점이 0°C 이상이면서 「위험화학품 산적운송선박의 구조 및 설비를 위한 국제협약」 제17장의 영문 o란의 16.2.7에 해당하는 지속성 부유물질의 경우 해양 오염방지협약 부속서 2 제13.9규칙에서 정한 지역 내에서의 배출은 제5호사목1)라)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나. 배출해역·예비세정방법 및 배출방법

아래의 순서에 따라 스트리핑하고 예비세정(예비세정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 순
서 | 오염방지설비의 작동 및 배출 방법 | 세정 및 배출 절차
(CDP: Cleaning and Disposal Procedures) | | | | |
|--------|--|---|-----------|-----------|-----------|---|
| | | 1(a)
) | 1(b)
) | 2(a)
) | 2(b)
) | 3 |
| 1 | 국제협약 부속서 2 부록 4의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제3절에 적합하게 탱크 및 배관을 스트리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탱크당 잔류허용량은 다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 ○ | ○ | ○ | ○ | ○ |
| 2 | 국제협약 부속서 2 부록 4의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의 부록 B에 따라 예비세정하고 잔류물을 수용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예비세정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비고 1과 같다. | ○ | ○ | | | |
| 3 | 예비세정에 추가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후속 세정을 한다.
1) 1994년 7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은 세정기의 전체 사이클 사용
2) 1994년 7월 1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은 $k = 1.0$ 으로 계산된 수량 이상이어야 함 | | ○ | | | |
| 4 |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의 부록 C에 따라 통풍세정 방법을 적용한다. | | | | | ○ |
| 5 | 탱크에 선박평형수를 적재하거나 화주가 요청한 수준까지 추가로 탱크를 세정한다. | ○ | | ○ | ○ | ○ |
| 6 | 탱크에 선박평형수를 추가로 주입한다. | | ○ | | | |
| 7 | 예비세정을 제외한 선박평형수, 잔류물, 물혼합물의 배출 조건 | | | | | |
| | 1)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기선으로부터 12해리 | ○ | | ○ | ○ | |
| | 2) 동력선은 7노트 이상, 무동력선은 4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항해 중에 배출할 것 | ○ | | ○ | ○ | |
| | 3) 수심 25m 이상.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에 대한 적용은 비고 2와 같다. | ○ | | ○ | ○ | |
| | 4) 수면하 배출[2007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이 Z류 물질의 잔류물, 잠정평가물질(Z류 물질로 잠정 평가된 물질을 말한다) 또는 이러한 물질이 함유된 평형수, 탱크세정 또는 그 밖의 혼합물을 배출하는 | ○ | | ○ | | |

| | | | | | | |
|---|--------------------------------------|---|---|---|---|---|
| |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 | |
| 8 | 선박평형수 배출 조건 | | | | | |
| | 1)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기선으로부터 12해리 | | ○ | | | |
| | 2) 수심 25m 이상 | | ○ | | | |
| 9 | 이후 탱크 안에 들어오는 모든 물은 제한 없이 해양으로 배출 가능 | ○ | ○ | ○ | ○ | ○ |

비고

-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선장의 요청에 따라 예비세정을 면제할 수 있다.
 - 양화된 탱크는 이전의 화물과 동등한 물질 또는 혼합하여도 화학반응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다른 물질로 다시 적하하여야 하며, 그 탱크는 적하 전에 세정하거나 선박평형수를 적재하지 아니할 것
 - 양화된 탱크는 항해 중에 세정하거나 선박평형수를 적재하지 아니할 것
 - 화물 잔류물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승인한 통풍절차에 따라 제거할 것
-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리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스트리핑 잔류 허용량 기준

| 선박 | 허용량(각 탱크 당 리터) | | |
|---|----------------|---------|---------|
| | X류 물질 | Y류 물질 | Z류 물질 |
| 2007년 1월 1일 이후 용골이 거치되는 선박 | 75 | 75 | 75 |
| 2007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으로서 국제산적화학물코드 적용선박 | 100~150 | 100~150 | 300~350 |
| 산적화학물코드 적용선박 | 300~350 | 300~350 | 900~950 |
| 2007년 1월 1일 전에 용골이 거치된 그 밖의 선박 | 비적용 | 비적용 | 최대한 비움 |

라. 적용면제

- 물질분류기준의 강화로 운송요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이 표, 국제산적화학물코드 및 산적화학물코드의 개정으로 당해 선박의 운송물질에 대한 운송요건이 강화된 경우로서 그 요건의 즉각적인 적용이 불합리하거나 실행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2007년 1월 1일 전에 건조되어 국내항해에만 전적으로 종사하는 선박에 한하여 각 물질별로 요건의 적용을 수정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연기할 수 있다.

나)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국제산적화학물코드 제17장의 식물성유를 운송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요건에 적합한 선박에 대하여는 설계, 구조, 설비, 운항 요건 등의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 (1) 유해액체물질을 산적운송하기 위하여 건조된 선박(NLS 탱커)으로서 화물창 위치를 제외하고 국제산적화학물코드의 3형식 선박의 모든 요건을 만족할 것
- (2) 전체 화물창의 길이는 평형수탱크 또는 기름을 적재한 탱크 외의 구역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화물창은 다음 거리만큼 안쪽으로 위치하여야 한다.
 - (가) 원탱크나 구역의 배치 시 화물창은 선측외판의 형선으로부터 내부로 760mm 이상이어야 한다.
 - (나) 이중선저탱크나 구역의 배치 시 화물창 저부와 선저외판 사이의 거리는 선저외판에 직각으로 측정하여 중심선에서 B/15 또는 2m 중 작은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최소 1m 이상이어야 한다.

다)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상에 주어진 면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2) 지방해양수산청장은 1986년 7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으로서 국내항해에만 종사하거나 협약당사국 사이의 제한된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스트리핑 잔류량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가) X류 물질, Y류 물질, Z류 물질 또는 혼합물이 있는 탱크를 세정하거나 선박평형수를 적재할 때마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승인한 예비세정 절차에 따라 탱크를 세정하고, 탱크 세정수는 수용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나) 그 이후에 유입된 세정수나 선박평형수는 수용시설 또는 배출해역·예비세정방법 및 배출방법에 따라 항해 중에 배출하여야 한다.

- 3)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화물창의 선박평형수를 적재하지 아니하고 수리나 입거 시에만 화물창을 세정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와 운항특성을 가진 선박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제4호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가) 선박의 설계, 건조 및 설비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리나 입거하기 전에 실시된 탱크 세정에 따른 폐수는 수용시설로 배출하고 그 적합성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다)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상에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1) 각 화물창은 상호반응하지 아니하고 중간세정 없이 동등한 탱크에서 교대로 운송할 수 있는 제한된 수의 물질을 운송하도록 승인되었다는 사실

(2) 면제의 상세

라) 선박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검인한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9.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6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제액화가스 산적운송적합증서 또는 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를 소지한 액화가스산적운송선이 다음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가.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 또는 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에 따라 운송이 허용된 유해액체물질만을 운송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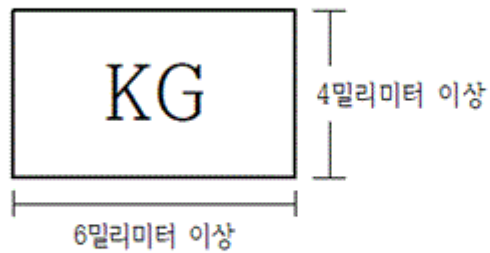
나. 가목의 유해액체물질을 산적운송하기 위하여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국제오염방지증서를 보유하고 있을 것

다. 제2조제21호에 따른 분리평형수 설비를 갖추는 것

라. 스트리핑 잔류 허용량 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펌핑 및 배관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마. 세정작업 중 화물잔류물과 물이 혼합되지 아니하고 통풍절차 후 화물잔류물이 남지 않게 하는 절차가 포함된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를 갖추어 두고 있을 것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5의2] <신설 2019. 2. 13.>
배출물 승인 표시(제13조의2제4항 관련)



※ 비고: 선박안전기술공단이나 선급법인이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출물의 승인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위 "KG" 표시를 해당 검사대행기관의 인장 또는 영문약어로 대체한다.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6] <개정 2021. 6. 30.>

분뇨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제14조제3항 관련)

1. 분뇨처리장치

가. 분뇨처리장치는 다음의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1) 공기관·분쇄기 및 스크린
- 2) 처리수의 배출 또는 이송을 위한 부속펌프 및 배관
- 3) 평균 유입 분뇨량의 50배 이상의 통풍량을 확보할 수 있거나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통풍장치

나. 분뇨처리장치의 재질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분뇨에 접촉하는 각 탱크의 내부는 강판재로서 에폭시라이닝(epoxy lining: 침식 및 부식 방지를 위해 재료의 접촉면에 에폭시 접착제를 대는 일), F.R.P 라이닝(F.R.P lining: 침식 및 부식 방지를 위해 재료의 접촉면에 강화플라스틱 약품재를 대는 일) 또는 타르에폭시 도장을 하거나 스테인레스 또는 그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것일 것
- 2) 배관·밸브류는 강관·주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서 내식성이 있을 것

다. 분뇨처리장치의 구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유지·관리 및 점검을 쉽게 할 수 있고, 탱크 안의 혼합액 및 처리수의 표본을 채취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2) 고위액면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탱크 안에 장치된 감지기는 방폭 구조일 것
- 3) 분뇨의 흡입으로부터 처리수의 배출까지의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일 것

라. 분뇨처리장치에는 다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1) 처리장치의 운전조건에 적합한 사용온도 및 염분농도의 범위
- 2) 처리능력 (1일 평균처리량 및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감소효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물화학적 처리방식 외의 다른 처리방식을 채택하는 분뇨처리장치의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2. 분뇨마쇄소독장치

가. 분뇨마쇄소독장치는 다음의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1) 순환수장치
- 2) 보조탱크

3) 배출펌프. 다만, 제14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외부배출관 설치 의무가 면제된 선박으로서 분뇨를 배출펌프 없이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순환펌프

5) 분뇨필터

6) 마쇄장치

나. 순환수장치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분뇨에 접촉하는 각 탱크의 내부는 강판재로서 에폭시라이닝, F.R.P라이닝 또는 타르에폭시 도장을 한 것이거나 스테인레스 또는 그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재질일 것

2) 탱크 안은 녹슬지 아니하도록 처리할 것

3) 소독약제를 용이하게 주입할 수 있을 것

4) 액면지시장치를 갖출 것

5) 탱크 안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6) 저장탱크의 악취가 외부로 발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다. 보조탱크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분뇨에 접촉하는 각 탱크 안은 강판재로서 에폭시라이닝, F.R.P라이닝 또는 타르에폭시 도장을 한 것이거나 스테인레스 또는 그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재질일 것

2) 탱크 안은 녹슬지 아니하도록 처리할 것

3) 탱크 안을 물로 세정할 수 있을 것

4) 액면지시장치를 갖출 것

5) 탱크 안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라. 배출펌프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분뇨 등의 배출에 용이한 구조일 것

2) 분뇨 등을 육상수용시설에 배출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일 것

마. 순환펌프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내식성이 있을 것

2) 변기의 분뇨 등을 세척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질 것

바. 분뇨필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내식성이 있을 것

2) 분뇨 등으로 인하여 막히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사. 마쇄장치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내식성이 있을 것

2) 분뇨 등을 마쇄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아. 순환수장치 및 보조탱크의 합계 총용량이 150ℓ 이상일 것.

3. 분뇨저장탱크

가. 분뇨저장탱크는 분뇨저장량을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액면지시장치, 측심관 장치 또는 분뇨저장량을 확인할 수 있는 투시장치와 저장탱크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장치로부터 가스가 방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분뇨저장탱크는 선박의 항해구역·최대승선인원 및 분뇨배출해역 등을 고려하여 다음 산식에서 정하는 크기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1) 1993년 5월 3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

가)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미만의 해역 이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text{분뇨저장탱크 용량}(\ell) = \{(\text{정박중 당직인원} \times \text{정박시간}/3) + (\text{최대승선인원} \times \text{항해예정시간}/3)\} \times \text{세정수 사용량} \times \text{항차수} \times 1.2$$

여기서,

정박시간: 1일 24시간에서 항해예정시간을 뺀 시간

최대승선인원: 선박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

항해예정시간: 출발항에서 최종 도착항에 이르는 기항지의 정박시간을 포함한 총소요시간. 다만, 일정한 항로가 없는 부정기 선박에 대하여는 1일 항해예정시간을 8시간으로 한다.

세정수 사용량(ℓ): 해당 변기의 제조자의 사양(1회 사용량)에 따르고 사양에 없는 경우 1회 사용 시 소모되는 양을 실측한다.

항차수: 육상수용시설을 이용하여 배출할 때까지의 항해 횟수

나)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벗어나는 항해구역을 가진 선박

$$\text{분뇨저장탱크 용량}(\ell) = \{(\text{정박 중 당직인원} \times \text{정박시간}/3) + (\text{최대승선인원} \times \text{영해기선으로부터 3해리 이상 12해리 미만의 해역을 벗어나는 소요시간}/3)\} \times \text{세정수 사용량} \times 1.2$$

여기서, 정박시간·최대승선인원 및 세정수 사용량은 가)와 같다.

2) 1993년 5월 3일 전에 건조된 선박

1)의 산식에 따라 정하여진 분뇨저장탱크 용량의 50% 이상일 것. 다만, 항해예정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선박으로서 선박의 구조상 1)의 산식에 따라 정하여진 분뇨저장탱크 용량의 50% 이상을 만족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1)의 산식에 따라 정하여진 분뇨저장탱크 용량의 3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분뇨에 접촉하는 각 탱크의 안은 강판재로서 에폭시라이닝, F.R.P라이닝 또는 타르에폭시 도장을 한 것이거나 스테인레스 또는 그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재질일 것

라. 분뇨 등을 육상수용시설에 배출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의 배출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제14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외부배출관 설치 의무가 면제된 선박으로서 분뇨를 배출펌프 없이 해양이나 육상으로 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출펌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외부 배출관

가. 배출관장치는 분뇨 등을 저장탱크로부터 수용시설에 이송할 수 있는 관과 표준연결구를 갖추어야 한다.

나. 수용시설의 관을 선박의 배출기관과 연결할 수 있도록 양측의 관에는 다음의 표에 따른 표준연결구가 붙어 있어야 한다.

| 항 목 | 규 격 |
|----------------|----------------------------|
| 바깥지름 | 210 mm |
| 안지름 | 배관을 연결하기에 적합한 지름 |
| 볼트원의 지름 | 170 mm |
| 플랜지의 홈 너비 | 18 mm |
| 플랜지의 두께 | 16 mm |
| 볼트·너트의 지름 및 갯수 | 각각 16mm의 지름 및 적당한 길이의 것 4개 |

비고

- 1) 플랜지는 안지름이 최대 100mm인 배관까지 붙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강재 또는 동등한 재질의 것으로 평평한 면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적당한 가스켓을 사용한 경우 1cm²당 6kg의 상용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2) 5m 이하의 형심을 갖는 선박에 대하여는 배출연결구의 안지름을 38mm 이하로 할 수 있다.
- 3) 여객선과 같이 지정된 항로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 배출관에 대체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신속 연결 커플링과 동등한 형태의 배출 연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7] <개정 2021. 12. 23.>

기름오염방지설비 설치 및 폐유저장용기 비치기준(제15조제1항 관련)

1. 기관구역에서의 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기준

| 대상선박 | 기름오염방지설비 |
|---------------------------------------|--|
| 가. 총톤수 50톤 이상 400톤 미만의 유조선 | 1) 선저폐수저장탱크 또는 기름여과장치 |
| 나. 총톤수 100톤 이상 400톤 미만으로서 유조선이 아닌 선박 | 2) 배출관장치 |
| 다. 총톤수 400톤 이상 1만톤 미만의 선박(마목의 선박 제외) | 1) 기름여과장치
2) 유성찌꺼기탱크
3) 배출관장치 |
| 라. 총톤수 1만톤 이상의 모든 선박(마목의 선박 제외) | 1) 기름여과장치
2) 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
3) 유성찌꺼기탱크
4) 배출관장치 |
| 마. 총톤수 400톤 이상으로서 국제특별해역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 1) 기름여과장치
2) 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
3) 유성찌꺼기탱크
4) 배출관장치 |

비고

가. 기관구역이 없는 부선, 합계출력 1,470kW(2,000PS) 미만의 기관(기관구역 밖에 설치된 기관으로서 연료유계통이 기관구역과 분리된 기관은 합계출력 산정 시 제외한다)이 설치된 부선 또는 조선소에서 플로팅 도크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선으로서, 선저폐수를 해양에 배출하기 위한 배출관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대상선박에 요구되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기관(합계출력 130kW 이상의 내연기관으로 한정한다)이 설치된 부선은 누유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유성찌꺼기를 선박 안에서 소각하고자 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소각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시추선 및 플랫폼에 스킵파일을 설치한 후 분리된 기름성분을 생산된 해저광물과 섞어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위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선박에 대한 기름오염방지설비는 선박의 기관구역이 좁거나 전원의 부족으로 배출관장치를 포함하여 선저폐수저장탱크 또는 기름여과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누유방지장치로 갈음할 수 있다.

마. 위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선박이 기관구역에서 발생하는 유성혼합물을 선박에 보유한 후 수용시설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유성찌꺼기탱크

크 및 배출관장치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항은 별지 제9호서식의 해양 오염방지 검사증서의 항행상의 조건란에 기재되어야 한다.

- 1) 위 마목에 해당하는 선박
- 2) 제12조의2에 따른 극지해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 3) 왕복 항해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선박으로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9호 각 목에 따른 고속선 안전증서를 발급받은 선박
- 4)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 및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 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바. 선박 내에서 기름연료 사용이 없어 기름오염 발생 가능성이 없는 선박은 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정한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화물구역에서의 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기준

| 구분 | 대상선박 | 기름오염방지설비 |
|------------------|---|--|
| 가. 유성평형수의 배출방지설비 | 1) 가) 근해구역 이상의 항해에만 종사하는 유조선 | (1)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2) 평형수배출관장치
(3) 혼합물탱크장치 |
| | 나)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유조선 | (1)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2) 평형수배출관장치 |
| | 다) 국제협약의 한 당사국 안에서만 종사하는 유조선 | (3) 혼합물탱크장치 |
| | 라) 아스팔트 또는 물과의 분리가 불가능한 물리적 특성을 가지는 정제유를 운송하는 유조선 | (4) (1) 및 (3)에도 불구하고 화물구역에서 발생하는 유성혼합물을 항해 중 바다에 배출하지 않고 선박에 저장하였다가 육상수용시설에 전량 배출하는 경우에는 평형수배출관장치만 설치할 수 있다. |
| | 마) 국제항해를 포함하는 연해구역 안에서만 종사하는 유조선 | (1)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2) 평형수배출관장치
(3) 혼합물탱크장치 |
| | 바) 육지로부터 50해리를 넘지 아니하고, 총 항해시간이 72시간 이내로 제한된 국제항해에 운항하는 유조선 | (4) (1)에도 불구하고 화물구역에서 발생하는 유성혼합물을 항해 중 바다에 배출하지 않고 선박에 저장하였다가 육상수용시설에 전량 배출하는 경우에는 평형수배출관장치 및 혼합물탱크장치만 설치할 수 있다. |
| | 2) 합계용적 200m ³ 이상의 기름을 실을 수 있는 화물창을 가진 선박 | 가)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나) 평형수배출관장치
다) 혼합물탱크장치
라) 가) 및 다)에도 불구하고 화물창의 합계용적이 1천m ³ 미만인 경우로서 화물창에서 발생 |

| | | |
|-----------------------------------|--|---|
| | | 하는 유성혼합물을 항해 중 바다에 배출하지 않고 선박에 저장하였다가 육상수용시설에 전량 배출하는 경우에는 평형수배출판장치만 설치할 수 있다. |
| 나.
평형수탱크
및
화물탱크의
세정설비 | 1) 1982년 6월 1일 후에 인도된 유조선으로서 원유만을 운송하는 재화중량톤수 2만톤 이상의 유조선 | 가) 분리평형수탱크
나) 화물창원유세정설비
다) 나)에도 불구하고 원유 세정에 적합하지 않은 원유만을 운송하거나 정제유와 함께 원유를 운송하는 유조선이 화물구역에서 발생하는 유성혼합물을 항해 중 바다에 배출하지 않고 선박에 저장하였다가 육상수용시설에 전량 배출하는 경우에는 분리평형수탱크만 설치할 수 있다. |
| | 2) 1982년 6월 1일 후에 인도된 유조선으로서 원유 및 정제유를 운송하는 재화중량톤수 2만톤 이상의 유조선 | |
| | 3) 1982년 6월 1일 후에 인도된 유조선으로서 정제유만을 운송하는 재화중량톤수 3만톤 이상의 유조선 | 분리평형수탱크 |
| | 4) 1982년 6월 1일 이전에 인도된 유조선으로서 원유만을 운송하는 재화중량톤수 4만톤 이상의 유조선 | 화물창원유세정설비 또는 분리평형수탱크 |
| | 5) 1982년 6월 1일 이전에 인도된 유조선으로서 정제유만을 운송하는 재화중량톤수 4만톤 이상의 유조선 | 가) 맑은평형수탱크
나) 평형수농도감시장치
다) 가) 및 나)에도 불구하고 분리평형수탱크를 설치한 경우에는 맑은평형수탱크 및 평형수농도감시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 | 6) 1982년 6월 1일 이전에 인도된 유조선으로서 원유와 정제유를 운송하는 재화중량톤수 4만톤 이상의 유조선 | 분리평형수탱크 |
| | 7) 1982년 6월 1일 이전에 인도된 유조선으로서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재화중량톤수 4만톤 이상의 유조선 | 가) 화물창원유세정설비 또는 분리평형수탱크
나) 가)에도 불구하고 화물구역에서 발생하는 유성혼합물을 항해 중 바다에 배출하지 않고 선박에 저장하였다가 육상수용시설에 전량 배출하는 경우에는 화물창원유세정설비 또는 분리평형수탱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비고

가. 화물창에 평형수를 적재하지 아니하는 특수평형수장치를 가지는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으로서 화물창세정을 위한 설비 및 세정수의 해양배출을 위한 관장치가 없는 선박은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평형수배출관장치 및 혼합물탱크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재화중량톤수 7만톤 이상의 유조선에 설치하는 혼합물탱크장치는 2개 이상의 혼합물탱크로 구성되어야 한다.

3. 폐유저장용기의 비치기준

가. 기관구역용 폐유저장용기

| 대상선박 | 저장용량(단위: ℓ) |
|-------------------------------------|-------------|
| 1) 총톤수 5톤 이상 10톤 미만의 선박 | 20 |
| 2) 총톤수 10톤 이상 30톤 미만의 선박 | 60 |
| 3) 총톤수 30톤 이상 50톤 미만의 선박 | 100 |
| 4) 총톤수 50톤 이상 100톤 미만으로서 유조선이 아닌 선박 | 200 |

비고

가) 폐유저장용기는 2개 이상으로 나누어 비치할 수 있다.

나) 폐유저장용기는 견고한 금속성 재질 또는 플라스틱 재질로서 폐유가 새지 아니하도록 제작되어야 하고, 해당 용기의 표면에는 선명 및 선박번호를 기재하고 그 내용물이 폐유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폐유저장용기 대신에 소형선박용 기름여과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나. 화물구역용 폐유저장용기

| 대상선박 | 저장용량(단위: ℓ) |
|------------------|-------------|
| 총톤수 150톤 미만의 유조선 | 400 |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8] <개정 2021. 6. 30.>

기름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제15조제2항 관련)

1. 누유방지장치

가. 누유방지장치는 기름받이와 기름받이에 모인 기름을 드레인탱크 또는 연료유택크로 보내는데 필요한 관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나. 기름받이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1) 재질: 금속제일 것
- 2) 구조: 선박이 세로방향으로 10도 또는 가로방향으로 22.5도 경사하는 경우에도 기름이 넘쳐 흐르거나 날리지 아니하는 것일 것
- 3) 설치장소: 유택크·유면계·유펌프·여과기·보일러화구·유청정기·분사밸브시험장치·주기관·보조기관·기름이 흐르는 관장치의 밸브 또는 콕 그 밖에 기름이 새어나올 우려가 있는 장치의 밑에 설치할 것

2. 선저폐수저장탱크

가. 선저폐수저장탱크는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1) 선저폐수저장용 탱크
- 2) 폐수표면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 3) 선저폐수(bilge)펌프(선저폐수를 저장탱크 및 수용시설에 이송하는 펌프)

나. 선저폐수저장용 탱크(Bilge Holding Tank)의 용량은 다음 산식에서 정하는 크기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추진기관이 없는 선박의 I/V값은 4.8로 한다).

$$C = \frac{I}{V} q$$

C: 선저폐수저장용 탱크의 용량(m³)

I: 해당 선박의 항해구역·항로 등에 따른 다음의 값(해리). 다만, I의 최대값은 16V로 한다.

- 1) 정기항로에 취항하는 선박

해당 항로로부터 선저폐수를 수용할 수 있는 항만까지 이르는 항해거리 중 최장거리

- 2) 항로가 일정하지 아니한 선박

해당 선박의 항해구역의 최장부분을 직선으로 측정한 거리(하나의 항만을 중심으로 항해하는 때에는 왕복의 거리)

V: 해당 선박의 시운전시의 속도(노트)

q: 0.00044 × 당해 선박의 총톤수

3. 기름여과장치

가. 기름여과장치는 여과장치·펌프(선저폐수를 유수분리기에 이송하는 것으로서 그 유수분리기의 능력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여과기 및 배수채취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나. 여과장치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1) 기름여과장치는 배출액의 유분농도를 100만분의 15 이하로 분리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질 것
 - 2) 수평면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22.5도 경사한 상태에서도 그 성능에 지장이 없을 것
 - 3) 선박의 항해 중에 선체의 동요·진동 등으로 그 성능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할 것
 - 4) 검사 및 청소가 용이하고 선저폐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 다. 여과장치는 나목에서 정하는 기준 외에 다음 표에 따른 처리능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 당해 선박의 총톤수(G) | 시간당 처리능력(m³) |
|--------------------------------|------------------|
| $G < 1\text{천}$ | $0.00044G$ |
| $1\text{천} \leq G < 4\text{만}$ | $0.4 + 0.00004G$ |
| $G \geq 4\text{만}$ | 2 |

4. 유성찌꺼기탱크

가. 유성찌꺼기탱크의 용량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연료유탱크에 평형수를 적재하지 아니하는 선박

$$V_1(\text{유성찌꺼기탱크의 최소용량}) = K_1CD(\text{m}^3)$$

K_1 : 주기관용 중질연료유를 청정하여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0.01(1990년 12월 31일 이후 건조된 선박은 0.015), 디젤유 또는 청정이 필요하지 아니한 중질연료유를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0.005

C: 1일 연료소비량(m^3)

D: 유성찌꺼기를 육상에 배출할 수 있는 항간의 최대항해기간(일)
(항해기간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

- 2) 연료유탱크에 평형수를 적재하는 선박

$$V_2(\text{유성찌꺼기탱크의 최소용량}) = V_1 + K_2B(\text{m}^3)$$

K_2 : 중질연료탱크에 대하여는 0.01, 디젤유탱크에 대하여는 0.005

B: 연료유의 운송을 위하여서도 사용될 수 있는 평형수탱크의 용량(m^3)

- 3)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소각설비를 갖춘 선박

총톤수 400톤 이상 4천톤 미만의 선박의 최소용량: 1m^3 (1990년 12월 31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은 1m^3 와 $0.5V_1$ 중 큰 값)

총톤수 4000톤 이상인 선박의 최소용량: 2m^3 (1990년 12월 31일 이후 건조된 선박은 2m^3 와 $0.5V_1$ 중 큰 값)

나. 수용시설로의 유성찌꺼기배출 및 내부의 청소가 용이하도록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1) 세정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탱크 안의 모든 부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맨홀을 갖추어야 한다.
- 2) 중질연료유를 정제하여 사용하는 선박의 유성찌꺼기탱크에는 적절한 가열장

치 또는 유성찌꺼기의 배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다른 적절한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3) 유성찌꺼기탱크에는 탱크 안의 내용물을 수용시설로 배출시키기 위한 전용펌프를 설치하되, 펌핑되는 액체물질의 특성, 탱크의 크기·위치 및 총 배출 소요시간을 고려한 적절한 형식 및 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다. 유성찌꺼기탱크는 선저폐수계통, 선저폐수저장탱크 또는 유수분리기와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수동조작자동폐쇄밸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으로 유성찌꺼기탱크의 침전수를 배출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 2) 유성찌꺼기 배출관과 선저폐수관이 표준배출연결구로 통하는 공통관에 연결되어 있지만 공통관을 통해 유성찌꺼기를 선저폐수관으로 이송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라. 유성찌꺼기탱크는 표준배출연결구를 제외하고는 선외로 직접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

5. 배출관 장치

가. 배출관장치는 선저폐수 또는 유성찌꺼기를 저장탱크로부터 수용시설에 이송할 수 있는 관장치와 표준배출연결구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당해 선박의 구조·유성찌꺼기의 발생량·점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표준배출연결구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표준배출연결구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1) 강제 또는 이와 동등한 성질을 가지는 재료일 것
- 2) 제곱센티미터당 6킬로그램 [6kg/cm²]의 사용압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 3) 다음과 동등한 규격을 갖출 것

| 항 목 | 규 격 |
|----------------|--------------------------------|
| 바깥지름 | 215mm |
| 안지름 | 배관을 연결하기에 적합한 지름 |
| 볼트원의 지름 | 183mm |
| 플랜지의 홈 너비 | 22mm |
| 플랜지의 두께 | 20mm |
| 볼트·너트의 지름 및 갯수 | 각각 20mm의 지름 및 적당한 길이
의 것 6개 |

6. 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

가. 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를 발할 수 있을 것
 - 가) 배출액의 유분농도가 0.0015% [15ppm]를 초과하는 때

나) 유분을 측정하는 기능에 이상이 생긴 때

다) 고장이 발생하는 때

2) 배출액의 유분농도를 측정할 때에 발생하는 오차가 0.0005%[5ppm] 이내일 것

3) 해당 장치에 배출액이 통과하기 시작한 후 20초 이내에 유분의 농도를 측정하여 지시할 수 있을 것

4) 장치의 교정 및 측정감도의 조정을 적정하게 할 수 있는 구조일 것

5) 유분이 다량으로 함유된 배출액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것

6) 수평면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22.5도 경사한 상태에서도 그 성능에 지장이 없을 것

7) 선박의 항해 중에 발생하는 선체의 동요·진동 등으로 그 성능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할 것

나. 국제특별해역만을 항해하는 선박과 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의 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는 배출액의 유분농도가 0.0015%[15ppm]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배출을 자동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 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는 교정 이후 5년 이내 또는 제조자가 정한 주기 중 짧은 간격으로 제조자 또는 제조자가 위임한 자에 의하여 교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교정을 하지 않는 대신에 교정된 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로 교체할 수 있다.

7. 선박평형수배출관장치

가. 선박평형수배출관장치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해양 및 수용시설에 배출하기 위한 배출구가 있을 것. 다만, 선박평형수를 수용시설에만 배출하는 선박은 해양에 배출하기 위한 배출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배출되는 선박평형수를 감시하는 상갑판상 또는 그 이상의 위치에 선박평형수의 배출을 정지시키기 위한 장치가 있을 것. 다만, 감시하는 장소와 배출정지장치가 있는 장소 사이에 전화 등 정보전달수단을 갖추고 있는 선박과 현존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해양에의 배출구는 최대의 선박평형수를 적재한 상태에서의 홀수선보다 위쪽에 위치하고 선측까지 연결될 것. 다만, 선박평형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수용시설에의 배출용 매니폴드가 폭로갑판상 양측 선측에 설치되어 있을 것

나. 분리평형수탱크 또는 원유세정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유조선의 선박평형수배출관장치는 가목에 따른 기준 외에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화물유펌프 및 관내에 남아있는 기름을 수용시설과 화물창 또는 혼합물탱크로 이송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2) 1)의 장치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소구경관을 포함하는 것일 것

가) 선박의 매니폴드밸브의 바깥쪽에 연결될 것

나) 소구경관의 단면적이 주화물배출관 단면적의 10% 이내일 것. 다만, 1982

년 6월 1일 후에 인도된 유조선 외의 선박으로서 이미 주화물배출관 단면적의 25% 이내의 소구경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가.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는 유분농도계·유량계·선속계·감시기록장치 및 자동배출정지장치(제화중량톤수 4천톤 이상의 유조선으로 한정한다)를 갖추고 작동설명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유분농도계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배출액의 유분농도를 측정할 때에 발생하는 오차가 배출되는 유분농도의 20% 또는 0.001%[10ppm] 중 큰 값 이내일 것
- 2) 측정한 유분농도에 관한 정보를 감시기록장치에 자동적으로 입력할 수 있을 것
- 3) 해당 장치에 배출액이 통과하기 시작한 후 20초 이내에 유분농도를 측정하여 지시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4) 장치의 교정 및 측정감도의 조정을 적정하게 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5) 유분이 다량으로 함유된 배출액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6) 제3호나목3) 및 4)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유량계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해수 및 기름에 대하여 내식성을 가지는 재료로 제조된 것일 것
- 2) 전 배출과정을 통하여 순간배출유량의 측정오차가 15% 이내일 것
- 3) 측정한 유량에 관한 정보를 감시기록장치에 자동적으로 입력할 수 있을 것.
다만, 제화중량톤수 4천톤 미만의 유조선의 경우에는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다.
- 4) 제3호나목3) 및 4)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라. 선속계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속력을 숫자로 나타내는 것은 0.1노트단위까지 표시할 수 있을 것
- 2) 속력을 눈금으로 나타내는 것은 적어도 0.5노트마다 눈금을 표시하고 10눈금마다 숫자를 명확하게 적은 것일 것
- 3) 후진속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선박의 진행방향을 표시할 수 있을 것
- 4) 속력의 표시가 보기 쉬운 것일 것
- 5) 속력의 5% 또는 0.5노트 중 큰 값 이내의 오차로서 속력을 측정할 수 있을 것
- 6) 측정한 속력에 관한 정보를 감시기록장치에 자동적으로 입력할 수 있을 것. 다만, 제화중량톤수 4천톤 미만의 유조선의 경우에는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다.
- 7) 제3호나목3) 및 4)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마. 감시기록장치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다음의 배출에 관한 정보가 계수형기록기로 계속적으로 기록되고 그 기록사항이 3년간 보존될 수 있는 것일 것
- 가) 유분의 순간배출농도 및 유성혼합물의 배출률

- 나) 1헤리당 유분의 순간배출률 및 유분의 배출총량
- 다) 배출시각 및 일자
- 라) 선박의 속력
- 마) 배출감시장치의 작동상태

2) 다음의 경우에 보고 들을 수 있는 정보를 발할 수 있을 것

- 가) 유분의 순간배출률이 1헤리당 30ℓ를 초과하는 때
- 나) 유분의 배출총량이 적제화물유 총량의 3만분의 1을 초과하는 때(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인도된 선박으로서 유조선의 경우에는 1만5천분의 1을 초과하는 때)
- 다) 유분농도계·유량계 또는 선속계의 작동이 불량하거나 그 밖의 고장이 발생하는 때

3) 배출을 시작함과 동시에 작동할 것

4) 제3호나목3) 및 4)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바. 자동배출정지장치는 마목2)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발하여야 하는 경우에 배출을 자동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선박평형수농도감시장치

가. 선박평형수농도감시장치는 유분농도계 및 감시기록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나. 유분농도계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배출액의 유분농도를 측정할 때에 발생하는 오차는 100만분의 5 이내일 것
- 2) 제8호나목2)부터 6)까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 감시기록장치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보고 들을 수 있는 정보를 발할 수 있을 것
 - 가) 유분농도가 0.0015% [15ppm]를 초과하는 때
 - 나) 유분을 측정하는 기능에 이상이 생긴 때
 - 다) 고장이 발생한 때
- 2) 유분농도 및 배출일시를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배출을 시작함과 동시에 작동할 것
- 3) 제3호나목3) 및 4)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10. 혼합물탱크장치

가. 혼합물탱크장치는 혼합물탱크·혼합물이송장치·유수정계면검출기를 갖추어야 한다.

나. 혼합물탱크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탱크의 용량(혼합물탱크의 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용량)이 총화물창 적제용적의 3% 이상일 것.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세정방법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감할 수 있다.
- 2) 혼합물탱크에 이송된 혼합물이 지나치게 섞이지 아니하고 유수분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일 것

다. 혼합물이송장치는 화물창세정수·유성평형수 등을 혼합물탱크에 이송하는 장치로서 당해 선박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이에 필요한 관장치, 펌프 등을 적절히 갖추고 있어야 한다.

라. 유수경계면검출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어떠한 종류의 기름에 대하여도 25mm 이내의 오차로서 혼합물탱크 또는 화물창의 유수경계면 위치를 신속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
- 2) 고정식 유수경계면검출기가 설치되어 있는 혼합물탱크 또는 화물창을 화물창의 원유세정설비로 세정하는 때에는 세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충격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것일 것
- 3) 해수·기름 및 불활성가스에 대하여 충분한 내식성을 가질 것
- 4) 제3호나목3) 및 4)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11. 분리평형수탱크

가. 분리평형수탱크는 이를 설치하고 있는 유조선이 당해 분리평형수탱크에만 평형수를 적재하는 상태에서 다음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배의 길이가 150m 미만인 유조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배의 길이의 중앙의 형홀수(용골의 상면에서 홀수선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값 이상일 것

$$0.02L + 2.0(m)$$

L: 배의 길이(m)

- 2) 선미중경사가 배의 길이의 1천분의 15 이하일 것
- 3) 프로펠러가 완전히 물에 잠길 수 있을 것

나. 1982년 6월 1일 이후에 인도되어 원유만을 운송하는 제화중량톤수 2만톤 이상의 유조선과 정제유만을 운송하는 제화중량톤수 3만톤 이상의 유조선에 설치하는 분리평형수탱크는 가목에 따른 기준 외에 다음의 배치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sum PAc + \sum PAs \geq J[Lt(B+2D)]$$

PAc: 분리평형수탱크 또는 기름탱크 외의 장소(선체중심선의 직각방향으로 측정한 너비가 2m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를 선측외판에 투영한 면적(㎡)

PAs: 분리평형수탱크 또는 기름탱크 외의 장소(그 최저깊이가 15분의 B 또는 2m 중 작은 값 이상의 것으로 한정한다)를 선저외판에 투영한 면적(㎡)

B: 배의 너비(m)

D: 배의 형깊이(m)

Lt: 화물창구역의 전단과 후단간의 길이(m)

J: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값 또는 10분의 3중 큰 것

$$0.45 - \frac{1}{1,200,000}(DW - 20,000)$$

DW: 제화중량톤수

12. 맑은평형수탱크

- 가. 분리평형수탱크의 요건에 적합한 용량을 가질 것
- 나. 평형수의 배출감시를 위하여 설치하는 평형수농도감시장치와 연결된 것일 것
- 다. 맑은평형수탱크의 시스템과 조작방법을 설명하는 맑은평형수탱크 조작지침서를 비치하고 있을 것

13. 화물창원유세정설비

가. 화물창원유세정설비는 세정기·세정기용펌프·세정용배관 및 스트리핑장치를 갖추고 조작설명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세정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해수·기름 및 불활성가스에 대하여 충분한 내식성을 가질 것
- 2) 각 화물창에 고정 설치되고 작동 중에 발생하는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치될 것
- 3) 화물창의 외부에서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4) 세정용 배관에 장치된 스톱밸브로 각각 격리될 수 있을 것
- 5) 갑판에 설치된 세정기를 떼어내는 경우에 대비하여 세정용 공급배관의 차단 및 화물창개구의 폐쇄에 필요한 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 6) 세정기의 구동장치가 따로 독립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구동장치는 당해 세정기를 구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1회의 세정작업 중에 3회 이상 옮겨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수의 구동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 7) 세정기의 노즐지름·사용압력·운동방식 및 운동주기에 따른 특성이 당해 화물창세정에 적합한 것일 것
- 8) 각 화물창에 설치하는 세정기의 수와 위치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 다만,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인도된 선박으로서 특정 화물창 안에 복잡한 구조재가 설치되어 있어 각 화물창별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체 화물창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가) 화물창 안의 구조재로 인하여 세정기에서 분사되는 세정유가 직접 도달되지 아니하는 수평사각면적이 화물창의 바닥 면과 구조재의 윗면의 면적을 합한 총수평면적의 10% 이내일 것

나) 화물창 안의 구조재로 인하여 세정기에서 분사되는 세정유가 직접 도달되지 아니하는 수직사각면적이 화물창의 위벽면적을 합한 총수직면적의 15% 이내일 것

다. 세정기용펌프는 세정기를 동시에 작동하는 때 세정용원유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세정용배관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사용압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지고 선체에 견고하게 고정된 것일 것
- 2) 세정유공급관에 세정기용펌프의 흡입관과 연결되어 있는 과압방지장치를 설

치할 것

- 3) 세정용배관의 세척을 위하여 해수밸브가 연결된 경우에는 해수관과의 접속부를 차단판 등으로 막을 수 있을 것
- 4) 관내에 남아있는 기름을 쉽게 제거할 수 있을 것

마. 스트리핑장치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화물창의 바닥에 원유 또는 원유찌꺼기가 남지 아니하도록 설계된 것일 것
- 2) 세정기로부터 최대 분사되는 세정유 총량의 1.25배를 흡입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 3) 화물유펌프 및 배관에 남아있는 기름을 흡입하여 화물창 및 욕상으로 이송할 수 있을 것
- 4) 작동성능을 감시하기 위한 설비가 있을 것

바. 화물창원유세정설비는 선박이 최초로 원유운송에 종사한지 1년 후 또는 세 번째 원유운송 항해를 완료한 시점 중 늦은 시기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설비요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14. 소각설비

가. 소각설비는 소각기 또는 유화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나. 소각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소각기의 재료·구조 및 설치

- 가) 주요부에 사용하는 재료는 내화성 및 내식성을 가질 것
- 나) 용이하게 점검과 보수를 할 수 있을 것
- 다) 전체의 동요 및 진동에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
- 라) 고열부분 또는 화재의 위험이 있는 부분은 적당한 방열조치를 한 것일 것
- 마) 점화하기 전 소각기안을 충분히 환기시켜 남아있는 가스를 배출시킬 수 있을 것
- 바) 소각기의 밑바닥으로부터 드레인 등이 흘러내리지 아니할 것
- 사) 소각기는 연소가스가 누설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배출된 연소가스가 선박안에 재흡입되지 아니할 것
- 아) 고체폐기물을 투입하는 소각기의 투입구는 불길의 역류될 위험이 없는 구조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중문이 설치되어 있을 것
- 자) 자동점화되는 소각설비는 점화장치가 가동된 후에 연료가 공급될 것
- 차) 폐유·폐기물 및 연료가 자동공급되는 경우에는 이들의 공급을 조정할 수 있을 것
- 카) 소각기의 연기통로는 내연기관의 배기관과 연결되어서는 아니 되며, 2개 이상의 소각기의 연기통로가 서로 연결되거나 보일러의 연결통로와 연결된 경우에는 정지 중인 소각기 또는 보일러에 연소가스가 역류되지 아니할 것
- 타) 검사·수리 및 조작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갖고 견고한 받침위에 설치되어 있을 것

2) 안전장치와 경보장치

가) 소각기가 제한된 온도를 넘거나 화염이 소실된 때에는 자동적으로 폐유 또는 폐기물과 연료의 공급이 정지될 것

나) 다음의 경우에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가 작동될 것

- (1) 경보장치의 전원이 차단된 때
- (2) 냉각장치가 정지된 때(냉각장치를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
- (3) 폐유·폐기물 또는 연료가 압력분무식으로 공급되는 경우 이들의 분무 압력이 각각 저하된 때
- (4) 연소를 위한 송풍장치가 고장으로 정지된 때
- (5) 소각기가 제한된 온도를 넘거나 화염이 소실된 때

3) 측정장치 및 검정기

가) 충분한 내구성을 가지고 선체의 운동·진동 및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다음의 측정장치가 소각기마다 있을 것

- (1) 온도측정장치 1개
- (2) 폐유·폐기물 또는 연료의 분무압력을 표시하는 압력계 각 1개
- (3) 유량계(유해액체물질의 소각시로 한정한다)
- (4) 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 및 산소농도를 연속하여 측정할 수 있는 장치(유기염소화합물의 소각시로 한정한다)

나) 유기염소화합물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의 소각에 사용되는 소각기가 폐쇄된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소각기에서 배출된 가스를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적당한 장소에 가스검정기가 설치될 것

4) 통풍 및 그 밖의 장치

가) 폐쇄된 장소 안에 소각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 적당한 통풍장치가 있을 것

나) 폐유 또는 액상폐기물탱크로부터 당해 물질을 흡입하는 관은 당해 탱크벽에 부착된 밸브 또는 콕에 연결될 것

다) 나)의 밸브 또는 당해 설치장소 밖에서도 조작할 수 있을 것

다. 유화장치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유화기의 재료·구조 및 설치

가) 주요부에 사용하는 재료는 내화성과 내식성을 가질 것

나) 용이하게 점검과 보수를 할 수 있을 것

다) 선체의 동요 및 진동에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

라) 유성찌꺼기혼합탱크의 내용물을 균일하고 연소가능한 혼합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마) 유성찌꺼기중의 경질고형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

바) 연소장치의 용량에 맞는 유화능력을 가질 것

사) 연소장치의 점화 및 소화에 따라 폐유의 공급 또는 정지가 자동적으로 수행될 것

2) 측정장치

충분한 내구성을 가지고 선체의 운동·진동·습기 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

는 다음의 측정장치가 유화장치마다 있을 것

가) 유화처리 전 및 처리후의 압력을 표시하는 압력계 각 1개

나) 유성찌꺼기혼합탱크 및 유화장치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측정장치
각 1개

3) 유성찌꺼기혼합탱크 및 배관

가) 유성찌꺼기혼합탱크로부터 기름유성찌꺼기를 흡입하는 관은 당해 벽에 부착된 밸브 또는 콕에 연결될 것

나) 유성찌꺼기혼합탱크에는 다음의 연결관 또는 장치가 있을 것

(1) 연료유공급연결관

(2) 주입관 단면적의 1.25배 이상의 공기관

(3) 충분한 크기의 오버플로우관

(4) 적절한 드레인배출장치

(5) 내용물을 효과적으로 혼합할 수 있는 혼합장치

(6) 액면지시장치

다) 배관은 유성찌꺼기혼합탱크의 내용물과 그 외의 연료유탱크 등의 내용물이 상호역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

라) 배관은 유성찌꺼기가 퇴적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마) 배관은 유성찌꺼기를 소각하는 장치로 연결되고 선박 밖으로 연결되지 아니할 것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9] <개정 2019. 9. 11.>

손상복원성 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하는 대상선박 및 시기 (제15조제3항제1호 관련)

1. 손상복원성 선체 구조

1982년 6월 1일 후에 인도된 선박으로써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은 별표 14의 복원성 기준에 따른 손상복원성을 만족하는 선체구조여야 한다. 다만, 1989년 6월 30일 이전에 용골이 설치된 유조선으로서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2. 대량기름 배출을 방지할 수 있는 화물창

1974년 1월 1일부터 1975년 12월 31일 사이에 건조계약이 체결된 유조선(건조계약 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74년 6월 30일 이후에 용골이 설치된 것) 및 1982년 6월 1일 후에 인도된 선박은 별표 12 제1호에 따른 유조선의 대량의 기름 배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화물창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1989년 6월 30일 이전에 용골이 설치된 유조선으로서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4. 펌프룸의 이중선저(二重船底)구조

2007년 1월 1일 이후에 건조되는 재화중량톤수 5천톤 이상 유조선은 별표 12 제2호에 따른 펌프룸의 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5. 기름유출(accidental oil outflow performance) 방지구조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인도되는 유조선은 별표 12 제3호에 따른 기름유출 방지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6. 씨체스트(sea chest)밸브 및 선내측 격리밸브의 구조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인도되는 유조선으로서 씨체스트에 화물유관장치가 영구적으로 연결된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은 씨체스트밸브 및 선내측 격리밸브의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이 경우 화물을 적하, 운송 또는 양하하는 동안 씨체스트 밸브와 선내측 격리밸브 배관 사이에는 두 장치가 직접 연결되지 않도록 맹판(Blind Patch) 등의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10] <개정 2021. 6. 30.>

이중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하는 대상선박 및 시기

(제15조제3항제2호 관련)

1. 정의

가. "중질유"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15℃에서 밀도 900kg/m³를 초과하는 원유
- 2) 15℃에서 밀도 900kg/m³를 초과하거나 50℃에서 운동점성계수 180mm²/s를 초과하는 연료유
- 3) 비투멘(Bitumen), 타르(Tar) 및 그 유화액

나. "경질유"란 중질유가 아닌 원유 또는 연료유를 말한다.

다. "범주 1 유조선"이란 1982년 6월 1일 후에 인도된 유조선으로서 별표 7 제 2호에 따른 기름오염방지설비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다음의 선박을 말한다.

- 1) 원유, 연료유, 중유 또는 윤활유(이하 "원유등"이라 한다)를 운송하는 제화중량톤수 2만톤 이상의 유조선
- 2) 원유등 외의 기름을 운송하는 제화중량톤수 3만톤 이상의 유조선

라. "범주 2 유조선"이란 1982년 6월 1일 후에 인도된 유조선으로서 별표 7 제 2호에 따른 기름오염방지설비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다음의 선박을 말한다.

- 1) 원유 등을 운송하는 제화중량톤수 2만톤 이상의 유조선
- 2) 원유등 외의 기름을 운송하는 제화중량톤수 3만톤 이상의 유조선

마. "범주 3 유조선"이란 제화중량톤수 5천톤 이상의 유조선으로서 범주 1 유조선 또는 범주 2 유조선에서 정한 제화중량톤수 미만의 유조선을 말한다.

2. 1996년 7월 6일 전에 인도된 유조선의 선체구조

1996년 7월 6일 전에 인도된 유조선은 다음에서 정하는 날까지 이중선체구조, 소형선이중선체구조 또는 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선박의 구조기준이 별표 13 제1호 가목1) 및 2), 나목 또는 다목에 적합한 경우는 제외하되, 선측 보호거리는 외판에서 760mm 이상의 거리에 있어야 하고, 선저 보호거리는 B/15 또는 2m 중 작은 값 이상이어야 한다.

가. 국제항해 또는 국내항해를 하는 제화중량톤수 5천톤 이상의 범주 1 유조선, 범주 2 유조선 및 범주 3 유조선 중 경질유 운송선은 다음에 정한 날까지 이중선체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내항해에만 운항하는 유조선으로서 선측 또는 선저가 이중구조인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이중선체구조를 갖추지 아니하고 운항할 수 있으며, 2012년 1월 1일 이후에는 이중선체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1) 범주 1 유조선

가) 1982년 4월 5일 이전에 인도된 선박: 2005년 4월 5일

나) 1982년 4월 5일 후에 인도된 선박: 2005년의 날 중 인도일에 해당하는 날

2) 범주 2 유조선 및 범주 3 유조선

가) 1977년 4월 5일 이전에 인도된 선박: 2005년 4월 5일

나) 1977년 4월 5일 후부터 1978년 1월 1일 전에 인도된 선박: 2005년의 날 중 인도일에 해당하는 날

다) 1978년 및 1979년에 인도된 선박: 2006년의 날 중 인도일에 해당하는 날

라) 1980년 및 1981년에 인도된 선박: 2007년의 날 중 인도일에 해당하는 날

마) 1982년에 인도된 선박: 2008년의 날 중 인도일에 해당하는 날

바) 1983년에 인도된 선박: 2009년의 날 중 인도일에 해당하는 날

사) 1984년에 인도된 선박: 2010년의 날 중 인도일에 해당하는 날

아) 1985년 이후에 인도된 선박: 2010년 12월 31일

나. 국제항해하는 재화중량톤수 600톤 이상 5천톤 미만의 중질유 운송 유조선은 2008년 해당 선박의 인도일까지 소형선이중선체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 국내항해에만 운항하는 중질유 운송 단일선체 유조선

1) 2005년 4월 5일 전에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하고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유조선으로서 중질유를 운송하는 재화중량톤수 5천톤 이상의 범주 2 유조선 및 범주 3 유조선은 2010년 인도일까지 이중선체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의 인도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선박의 진수일을 인도일로 할 수 있다.

2) 2005년 4월 5일 이후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하는 유조선으로서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유조선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 재화중량톤수 600톤 이상 5천톤 미만의 유조선은 2008년의 날 중 인도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소형선이중선체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제42조에 따른 유조선 강화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선령 30년이 되는 해의 인도일에 속하는 날 전까지 소형선이중선체구조 또는 이중선체구조를 갖추지 아니하고 운항할 수 있다.

나) 재화중량톤수 5천톤 이상의 범주 2 유조선 및 범주 3 유조선은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 시 또는 2008년의 날 중 인도일에 해당하는 날 전까지 이중선체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3) 2008년 11월 1일 이후에 도입되는 유조선으로서 재화중량톤수 600톤 이상의 중질유를 운송하려는 유조선은 이중선체구조 또는 소형선이중선체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3. 1996년 7월 6일 이후에 인도되는 유조선의 선체구조
 - 가. 재화중량톤수 5천톤 이상인 유조선은 이중선체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나. 재화중량톤수 600톤 이상 5천톤 미만의 유조선은 소형선이중선체구조 또는 이중선저구조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인도되는 유조선으로서 재화중량톤수 600톤 이상 5천톤 미만의 중질유를 운송하는 유조선은 소형선이중선체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라. 나목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 1일 전에 인도된 선박으로서 재화중량톤수 600톤 이상 5천톤 미만의 중질유를 운송하는 국제항해 운항 유조선은 2008년의 날 중 인도일에 해당하는 날 전까지 소형선이중선체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마. 2008년 1월 1일 전에 인도되어 이중선저구조를 갖추고 국내항해에만 운항하는 유조선으로서 재화중량톤수 600톤 이상 5천톤 미만의 중질유를 운송하는 유조선은 선령 30년이 되는 해의 날 중 인도일에 해당하는 날 전까지는 소형선이중선체구조를 갖추지 아니하고 운항할 수 있다. 다만, 그 이후부터는 소형선이중선체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바. 나목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도입되는 재화중량톤수 600톤 이상 5천톤 미만의 중질유 운송 유조선은 소형선이중선체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사. 재화중량톤수 600톤 이상 5천톤 미만의 운송 유조부선으로서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및 「어항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어항구역 안에서만 운항하는 유조부선은 소형선이중선체구조 또는 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4.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인도되는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유조선의 선체구조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인도되는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 유조선은 별표 13 제4호에 따른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재화중량톤수 150톤 미만의 경질유 운송 유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2010년 1월 1일 전에 인도된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유조선의 선체구조

2010년 1월 1일 전에 인도되어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지 않은 유조선은 다음에서 정한 날 전까지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3)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선박의 크기 및 구조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지 않아도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운항할 수 있으나 운항 허용기간은 해당 선박의 인도일부터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1) 1969년 12월 31일 이전에 인도된 선박: 2020년 1월 1일
 - 2) 1970년 1월 1일부터 1979년 12월 31일까지 인도된 선박: 2021년 1월 1일
 - 3) 1980년 1월 1일 이후에 인도된 선박: 2022년 1월 1일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11]

선박 연료유탱크의 이중선체 구조(제15조제3항제3호 관련)

2010년 8월 1일 이후에 인도되는 선박의 연료유탱크에 대한 이중선체구조
연료유탱크의 총합계가 600m³ 이상인 연료유탱크를 가진 모든 선박의 연료유탱크는 이중선체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12] <개정 2021. 6. 30.>

선박의 화물창 등의 구조기준 (제15조제3항제4호 관련)

1. 화물창

유조선의 화물창은 화물창에 손상이 발생하는 때에 대량의 기름이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모든 화물창의 크기 및 배치는 사목에 따라 산정한 가상유출량이 한계유출량(3만 m^3 또는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한 값 중 큰 것을 말하되, 4만 m^3 를 최대한도로 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400 \sqrt[3]{DW}$$

DW: 재화중량톤수

나. 선측외판에 인접하는 화물창(이하 “선측화물창”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그 화물창의 용량이 한계유출량의 75%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분리평형수탱크의 배치를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선측화물창 외의 화물창(이하 “중양화물창”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그 화물창의 용량이 5만 m^3 를 넘지 아니할 것

라. 화물창의 세로방향의 길이는 화물창의 종류 및 중통격벽의 배치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산식에 따라 산정한 값 또는 10m중 큰 값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 |
|-----------|--|--|
| 선측
화물창 | 2 이상의 세로격벽이 있을 때 | 0.2L |
| | 1개의 세로격벽이 있을 때 | $(0.25bi/B + 0.15)L$ |
| | 세로격벽이 있을 때 | $(0.5bi/B + 0.1)L$
다만, 0.2L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중양
화물창 | bi/B 가 5분의 1 이상일 때 | 0.2L |
| | bi/B 가 5분의 1 미만으로서
중심선 세로격벽이 있을 때 | $(0.25bi/B + 0.15)L$ |
| | bi/B 가 5분의 1 미만으로서
중심선 세로격벽이 없을 때 | $(0.5bi/B + 0.1)L$ |

비고

bi 는 지정된 하기 건현의 위치에 있어서 선체중심선의 직각방향으로 선측에서 내측 해당탱크의 바깥 중격벽까지의 최소거리, L 은 선박의 길이, B 는 선박의 너비를 말한다.

마. 화물이송관장치가 2개 이상의 화물창을 서로 연결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정하는 용량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도록 화물창을 분리

하기 위한 밸브 그 밖의 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화물유를 싣고 해상에 있을 때에는 항상 폐쇄할 것

바. 아목1)의 가로방향의 범위(tc) 미만 또는 아목2)의 수직방향의 범위(Vs) 미만의 위치에 있는 화물창을 관통하는 관은 그 관이 개구되는 위치에 밸브 그 밖의 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선박의 종경사를 조정하기 위하여 화물이송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상에 있을 때에는 항상 폐쇄할 것

사. 가목의 규정에 따른 기름의 가상유출량은 각각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Oc: $\sum Wi + \sum KiCi$

Os: $A(\sum ZiWi + \sum ZiCi)$

Oc: 선측손상에 따른 기름의 가상유출량(m^3)

Os: 선저손상에 따른 기름의 가상유출량(m^3)

Wi: 아목에 따른 손상범위에 해당하는 선측화물창의 용적(m^3). 다만, 아목의 선측손상 시 세로방향의 손상범위(lc)보다 짧은 길이를 가지는 기름을 적재하지 아니한 공간 또는 분리평형수탱크가 선측화물창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Oc의 산정에 있어서 그 구획에 인접하는 두개의 화물창 중 작은 쪽의 용적에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값을 곱하여 얻은 값을 Wi로 할 수 있다.

$1 - li/lc$

li: 공간·분리평형수탱크 등 기름을 적재하지 아니하는 구획의 세로방향의 길이(m)

Ki: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값. 다만, bi가 tc와 같거나 클 때에는 영(0)으로 한다.

$1 - bi/tc$

bi: 선측화물창의 너비

lc, tc: 아목(1)에서 정하는 선측손상시의 세로·가로방향의 손상범위

Ci: 아목에 따른 손상범위에 해당하는 중앙화물창의 용적(m^3)

A: 3분의 1, 선저손상의 범위 안에 4개의 중앙화물창이 동시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4분의 1.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화물이송장치를 각 화물창에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4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

Zi: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값. 다만 hi가 Vs와 같거나 클 때에는 영(0)으로 한다.

$1 - hi/Vs$

hi: 이중선저의 높이(선저외판의 윗면에서 이중선저내저판의 아래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의 최소값(m). 이중선저가 없거나 해당 화물창의 일부

에만 있는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Vs: 나목2)에서 정하는 선저손상의 수직방향의 손상범위

아. 기름의 가상유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선체손상의 가상범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선측손상의 범위

| 구분 | 손상범위 |
|----------|------------------------------|
| 세로방향(lc) | $1/3L^{2/3}$ 또는 14.5m 중 작은 것 |
| 가로방향(tc) | B/6 또는 11.5m 중 작은 것 |
| 수직방향(Vc) | 형기선의 상부 |

2) 선저손상의 범위

| 구분 | 손상범위 | |
|----------|-------------------------------------|-------------------|
| | 전부수선으로부터 0.3L사이 | 그 밖의 부분 |
| 세로방향(ls) | L/10 | L/10 또는 5m 중 작은 것 |
| 가로방향(ts) | B/6 또는 10m중 작은 것. 다만, 5m를 최소값으로 한다. | 5m |
| 수직방향(Vs) | B/15 또는 6m 중 작은 것 | |

자. 기름의 가상유출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호 연결되어 있는 2개 이상의 화물창은 하나의 화물창으로 본다. 다만, 선박의 항해 중에 밸브 또는 폐쇄장치로 해당 화물창을 분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펌프룸의 이중선저구조

가. 이중선저탱크 또는 구역의 깊이는 어느 단면에서도 형기선과 수직으로 측정한 펌프룸 바닥과 형기선과의 거리(h)가 B/15m 또는 2m 중 작은 값 이상이 되는 이중선저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h는 1m 이상이어야 한다.

나. 펌프룸의 바닥판이 적어도 가목에서 요구하는 최소 높이로 기선 상방에 위치하는 경우[곤돌라 스텐 디자인(gondola stern designs) 등]에는 가목의 이중선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불구하고 펌프룸이 침수되어도 평형수 또는 화물펌프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면 가목의 이중선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름유출(accidental oil outflow performance) 방지구조

가. 유조선은 사고로부터 기름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선체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1) 재화중량톤수 5천톤 이상인 유조선은 다음의 평균기름유출지수에 적합한 것일 것

| 탱크적재 98%에서 화물유의
총용량(C) | 평균기름유출지수(OM) |
|--|--|
| $C \leq 20\text{만m}^3$ 인 경우 | $OM \leq 0.015$ |
| $20\text{만m}^3 < C < 40\text{만m}^3$ 인 경우 | $OM \leq 0.012 + (0.003/200,000)(400,000 - C)$ |
| $C \geq 40\text{만m}^3$ 인 경우 | $OM \leq 0.012$ |

- 2) 재화중량톤수 5천톤과 화물용량 20만 m^3 사이의 겸용선(combination carrier)은 다음의 평균기름유출지수에 적합한 것일 것

| 탱크적재 98%에서 화물유의
총용량(C) | 평균기름유출지수(OM) |
|---|--|
| $C \leq 10\text{만m}^3$ 인 경우 | $OM \leq 0.021$ |
| $10\text{만m}^3 < C \leq 20\text{만m}^3$ 인 경우 | $OM \leq 0.015 + (0.006/100,000)(200,000 - C)$ |

- 3) 재화중량톤수 5천톤 미만인 유조선은 각 화물창의 길이가 10m 이하이거나 다음 산식에 따른 값 중에서 큰 값일 것

가) 화물창 내부에 종방향 격벽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0.5 \frac{b_i}{B} + 0.1)L \text{ (다만, } 0.2L \text{ 이하일 것)}$$

bi: 지정된 하기 건현의 위치에 있어서 선체 중심선에 직각방향으로 선측에서 내측 해당 탱크의 바깥 종격벽까지의 최소거리

나) 화물창 내부에 중앙선 종방향 격벽을 가지고 있는 경우

$$(0.25 \frac{b_i}{B} + 0.15)L$$

다) 화물창 내부에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종방향 격벽을 가지고 있는 경우

(1) 횡 화물창: $0.2L$

(2) 중앙 화물창

(가) $\frac{b_i}{B} \geq 0.2L$ 인 경우 $0.2L$

(나) $\frac{b_i}{B} < 0.2L$ 인 경우

① 중앙선 종방향 격벽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0.5 \frac{b_i}{B} + 0.1)L$$

② 중앙선 종방향 격벽을 가지고 있는 경우:

$$(0.25 \frac{h_i}{B} + 0.15) L$$

나. 평균기름유출지수 계산시 다음의 일반적인 가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 1) 화물블록 길이는 혼합물탱크를 포함하여 화물유의 운송을 위하여 배치된 모든 탱크의 선수단[선수(船首)쪽의 끝점]과 선미단[선미(船尾)쪽의 끝점] 사이의 거리를 적용한다.
- 2) 모든 화물창, 혼합물탱크 및 화물블록 길이 이내에 위치한 연료유 탱크를 포함한 화물창에 적용한다.
- 3) 선박은 트림(trim) 또는 횡경사(heel) 없이 만재흘수선(ds)에 적재된 것으로 가정한다.
- 4) 모든 화물유 탱크는 그 탱크 용량 수용력의 98%에 적재된 것으로 가정하며 화물유의 비중(ρ_n)은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rho_n = \frac{1000(DWT)}{C} \text{ (kg/m}^3\text{)}$$

- 5) 유출 계산의 목적상 화물창, 평형수탱크 및 그 밖의 기름을 적재하지 아니한 구역을 포함하여 화물블록 이내 각각 구역의 투과성은 달리 증명된 것이 없는 한 0.99로 한다.
- 6) 흡입 웰이 작고 웰 바닥과 선저 바닥판 사이의 거리가 0.5h 이상이면 탱크 위치의 결정에 있어서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그 밖에 기름유출지수 및 기름유출 계산방식 등은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4. 연료유탱크의 이중선체구조

연료유탱크(소형연료유탱크를 포함한다) 용적의 총합계가 600m³ 이상인 선박은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이중선체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가. 연료유탱크 이중선체 보호거리 요건

| 구분 \ 탱크의 크기 | 600m ³ ≤ C < 5천m ³ | 5천m ³ ≤ C |
|-------------|--|--|
| 선저거리 요건 | h = B/20m 또는 h = 2m 중 작은 값. 다만, h의 최소치는 0.76m | h = B/20 m 또는 h = 2m 중 작은 값. 다만, h의 최소치는 0.76m |
| 선측거리 요건 | w = 0.4 + 2.4C/2만m
다만, w 최소치는 1m
(탱크용량이 500m ³ 미만은 0.76m) | w = 0.5 + C/2만m 또는
w = 2m 중 작은 값
다만, w 최소치는 1m |

비고

- 1) “연료유(oil fuel)”란 선박의 주기관 및 보조기관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적재된 기름을 말한다.
- 2) “연료유탱크(oil fuel tank)”란 연료유가 적재된 탱크를 말한다. 다만, 연료유를 적재하지 아니하는 탱크(overflow tank 등)는 제외한다.
- 3) “소형연료유탱크(small oil fuel tank)”란 탱크의 용량이 30㎥ 이하인 연료유탱크를 말한다.
- 4) “C”란 소형연료유탱크를 포함하여 98% 적재 상태의 연료유 총용량을 의미한다.
- 5) 개별 연료유 탱크는 2천5백㎥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6) 모든 연료유 탱크에 적용하되, 용량이 30㎥ 이하인 소형연료유탱크를 제외한다. 이 경우 제외된 탱크의 용량 합계가 60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가목의 대체요건은 다음과 같다.

| 탱크의 크기 | $600\text{m}^3 \leq C < 5\text{천m}^3$ | $5\text{천m}^3 \leq C$ |
|--------------|--|-----------------------|
| 평균기름유출지수(OM) | $OM < 0.0157 - 1.14 \cdot 10^{-6} \cdot C$ | $OM < 0.010$ |

선박의 이중선체구조 등의 기준(제15조제3항제5호 관련)

1. 이중선체구조

이중선체구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화물창의 전 길이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화물유 또는 연료유탱크 외의 구역 또는 평형수탱크로 보호되어야 한다.

1) 원탱크 또는 구역은

원탱크 또는 구역은 원형원단에 상관없이 선측의 전 길이에 걸쳐 연장되거나 이중선저의 상부에서부터 최상층갑판까지 연장되어야 하며, 이들 구역은 화물창이 선측외판의 내측에 위치하고, 그림 1과 같이 선측외판에서 수직으로 측정한 거리 w 가 어느 단면에서도 다음 값 이상이 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w=0.5+DW/2$ 만(m) 또는 2m중 작은 값. 다만, w 의 최소값은 1m 이상일 것(DW: 재화중량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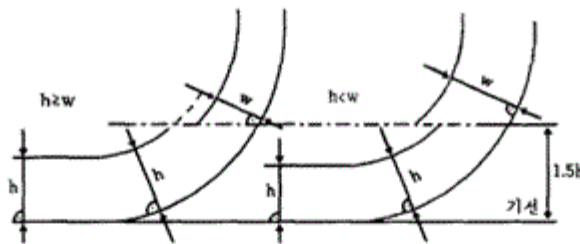


그림 1

2) 이중선저탱크 또는 구역

이중선저탱크 또는 구역의 깊이는 어느 단면에서도 그림 1에서와 같이 화물창바닥과 선저외판에서 수직으로 측정한 선저외판의 형선간의 거리(이하 “ h ”라 한다)가 $B/15m$ 또는 2m중 작은 값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h 의 최소값은 1m 이상이어야 한다.

3) 선저의 만곡부 부위 또는 선저의 만곡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위치에서 거리 h 와 w 가 상이한 경우 거리 w 는 그림 1에서와 같이 기선상방 $1.5h$ 를 초과하는 위치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4) 재화중량톤수 2만톤 이상의 원유유조선 및 재화중량톤수 3만톤 이상의 석유제품유조선의 경우에는 원탱크·이중선저탱크·선수탱크 및 선미탱크의 용적합계가 별표 8 제11호에 따른 분리평형수탱크의 용적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원탱크 또는 구역 및 이중선저탱크는 화물창의 길이에 따라 균형되게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체의 종굽힘응력·트림 등을 감소시키기 위

하여 추가로 설치하는 분리평형수의 용적은 장소에 관계없이 배치할 수 있다.

5) 화물창의 흡입웰은 거리 h 로 정의되는 경계선 아래의 이중저장탱크로 돌출될 수 있으나 가능한 한 작아야 하며, 웰하부와 선저외판의 거리는 $0.5h$ 이상이어야 한다.

6) 평형수관·측심관·공기관 등 평형수탱크에 설치되는 배관은 화물창을 통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화물관 등 화물창에 설치되는 배관은 평형수탱크를 통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배관의 길이가 짧은 경우에는 배관이 완전히 용접되거나 이와 동등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화물과 해수간에 단일경계를 이루는 선저외판에 미치는 화물 및 증기의 압력이 다음 식에 따라 외부유체정수압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유조선에 대하여는 가목2)에 따른 이중선저탱크 또는 구역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f \cdot hc \cdot pc \cdot g + 100 \Delta p \leq dn \cdot ps \cdot g$$

hc : 선저외판과 접하는 화물의 높이(m)

pc : 최대화물밀도(t/m^3)

dn : 예정된 적하상태하에서의 최저운항흘수(m)

ps : 해수밀도(t/m^3)

Δp : 화물창에 설치된 압력/진공밸브의 최대설정압력(bar)

f : 안전계수(1.1)

g : 표준중력가속도($9.81m/s^2$)

1) 유체정수압의 요건을 충족하는데 필요한 수평구획은 기선으로부터 $B/6$ 또는 6m중 작은 값 이상이고, 선체중양부 형깊이의 0.6배 이하가 되는 높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원탱크 또는 구역의 위치는 가목1)에 적합하여야 하며, 기선으로부터 $1.5h$ 이하 되는 구역에서의 화물창의 경계선은 그림 2에서와 같이 선저외판까지 수직선으로 내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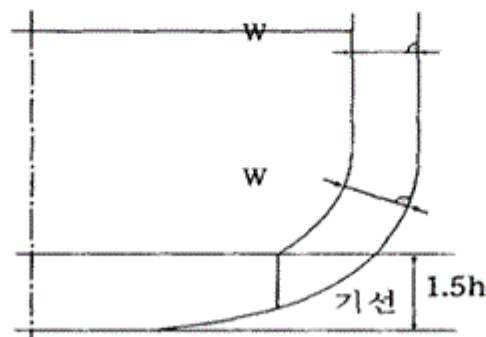


그림 2

다. 이중선체구조를 적용하는 유조선의 설계 및 구조에 대한 다른 대체방식의

경우에도 가목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체방식은 충돌이나 좌초사고시에 기름오염방지에 대하여 최소한 이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동등한 정도의 보호를 확보하여야 하고,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개발된 지침에 따라 그 기구의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승인된 방식에 따른 것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소형선이중선체구조

화물창의 전 길이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화물유·연료유탱크 이외의 구역 또는 평형수유탱크로 보호되어야 한다.

가. 이중선저탱크 또는 구역의 깊이는 어느 단면에서도 그림 1에서와 같이 화물창바닥과 선저외판에서 수직으로 측정한 선저외판의 형선간의 거리(이하 “h”라 한다)가 $B/15m$ 이상이어야 하고, $B/15m$ 가 0.76m 미만인 경우는 최소 0.76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1996년 7월 6일 전에 건조된 유조선의 h가 0.76m(바닥두께를 포함한다)이상이면, 그 이중선저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유탱크 또는 구역은 원형 원단에 상관없이 선측의 전 깊이에 걸쳐 연장되거나 이중선저의 상부에서부터 최상층갑판까지 연장되어야 하며, 이들 구역은 화물창이 선측외판의 내측에 위치하고, 그림 1과 같이 선측외판에서 수직으로 측정한 거리 w가 어느 단면에서도 다음 값 이상이 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w = 0.4 + \frac{2.4DW}{2\pi} (m) \quad (DW: \text{재화중량톤수})$$

w의 최소값 = 0.76 m

3. 이중선저구조

이중선저구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제1호가목2)에 따른 h가 $B/15m$ 이상이 되도록 이중선저탱크 또는 구역이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h의 최소값은 0.76m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선저의 만곡부에서의 화물창경계선은 그림 3과 같이 선체의 중앙부평저의 선과 평행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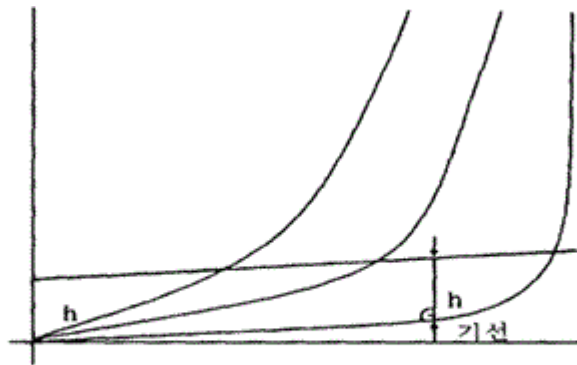


그림 3

나. 각 화물창의 용적이 700m³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화물창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원탱크 또는 구역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고 제1호가목1)에 따라 배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w = 0.4 + 2.4DW/2$ 만(m). 다만, w의 최소값은 0.76m 이상이어야 한다.

4. 소형선이중선저구조

제1호가목2)에 따른 h가 B/7.5m 이상이면서 그 최소값이 0.65m 이상이 되도록 이중선저탱크 또는 구역이 설치되어야 하되, h가 0.76m 이상일 경우에는 h를 0.76m로 하여 이중선저탱크 또는 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저의 만곡부에서의 화물창경계선은 그림 3과 같이 선체의 중앙부평저의 선과 평행하여야 한다.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14] <개정 2025. 8. 12.>

선박의 복원성 기준(제15조제3항제6호 관련)

1. 손상복원성 기준

1979년 12월 31일 후에 인도된 유조선은 다음의 장소에서 선측 또는 선저의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복원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평형수상태를 제외한다.

가. 손상장소

| 배의 길이(L) | 손상장소 |
|---------------------------------------|--|
| 1) $L > 225\text{m}$ | 세로방향의 장소 |
| 2) $225\text{m} \geq L > 150\text{m}$ | 선미에 배치된 기관구역의 전부 또는 후부격벽을 제외한 가로방향의 장소와 기관구역을 제외하고 인접하는 가로격벽 사이의 세로방향의 장소. 이 경우 기관구역은 단일의 침수구획으로 본다. |
| 3) $150\text{m} \geq L$ | 기관구역을 제외하고 인접하는 가로격벽 사이의 가로방향의 모든 장소 |

나. 선측 또는 선저의 가상손상범위

1) 선측손상

| 구분 | 손상범위 |
|------|------------------------------|
| 세로방향 | $1/3L^{2/3}$ 또는 14.5m 중 작은 것 |
| 가로방향 | 배의 너비(B)/5 또는 11.5m 중 작은 것 |
| 수직방향 | 형기선의 위쪽으로 무한대 |

2) 선저손상

| 구분 | 손상범위 | |
|------|------------------------------|---------------------------|
| | 전부수선부터 0.3L | 그 밖의 범위 |
| 세로방향 | $1/3L^{2/3}$ 또는 14.5m 중 작은 것 | $1/3L^{2/3}$ 또는 5m 중 작은 것 |
| 가로방향 | B/6 또는 10m 중 작은 것 | B/6 또는 5m 중 작은 것 |
| 수직방향 | 형기선의 위쪽으로 B/15 또는 6m 중 작은 것 | |

3) 선저굽힘손상

이중선체구조를 적용하는 재화중량톤수 2만톤 이상의 유조선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세로방향의 범위

- (1) 재화중량톤수 7만5천톤 이상의 선박: 전부수선으로부터 측정하여 0.6L

(2) 재화중량톤수 7만5천톤 미만의 선박: 전부수선으로부터 측정하여 0.4L

나) 가로방향의 범위: 선저 어느 부분에서도 B/3

다) 수직방향의 범위: 선체외판의 손상

다. 손상시 복원성의 기준

- 1) 유조선의 손상결과 발생하는 최종수선은 침수의 진행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개구[공기관(空氣管, Air Pipe)과 풍우밀문(風雨密門, Weather tight Door) 또는 창구덮개로 폐쇄된 개구를 포함한다. 다만, 수밀(水密, Water tight) 맨홀뚜껑, 평갑판구·갑판의 보전성을 완전히 유지하는 소형의 수밀 화물탱크 창구덮개, 원격조작 수밀 슬라이딩문, 덮개나 문이 설치된 해당 장소와 선교에 개폐 여부가 표시되고 항해 중 통상 폐쇄되는 신속작동이나 단일작동 형식의 여닫이 수밀문, 항해 중 영구적으로 폐쇄되는 여닫이 수밀문 및 비개폐형 현창으로 폐쇄되는 개구는 제외한다]의 아랫부분보다 낮아야 한다.
- 2) 비대칭침수에 따른 횡경사각은 25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갑판 가장자리가 침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 3) 최종 평형시 복원정곡선은 평형위치로부터 최저 20도의 복원력 범위를 갖고, 20도의 범위 안에서 적어도 0.1m의 최대잔존복원정을 가지는 것이어야 하며, 이 범위 안의 곡선하부 면적은 0.0175m-rad 이상이어야 한다.
- 4) 침수의 시작부터 최종 평형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복원정 곡선, 최대잔존복원정 및 복원정 곡선의 하부면적은 3)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 5) 손상시 복원성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가상손상구역의 침수율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구역 | 침수율 |
|------------|----------|
| 저장용품구역 | 0.60 |
| 거주설비구역 | 0.95 |
| 기관구역 | 0.85 |
| 공간구역 | 0.95 |
| 소비성 액체용구역 | 0에서 0.95 |
| 그 밖의 액체용구역 | 0에서 0.95 |

2. 비손상 복원성 기준

가. 2002년 2월 1일 이후에 인도된 재화중량톤수 5천톤 이상의 모든 유조선은 액체 이송작업의 중간단계를 포함하여 양호한 작업상황, 화물 및 평형수 적재

의 최악의 조건하의 모든 운항 흘수에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모든 조건 하에서 평형수탱크는 부분적재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1) 항내 기준

횡경사 0° 에서 측정된 자유표면에 대하여 보정된 초기의 메타센터 높이(GM₀)는 0.15m 이상이어야 한다.

2) 해상기준

가) 복원정곡선(GZ곡선) 아래의 면적은 횡경사각 $\theta=30^\circ$ 까지는 $0.055\text{m}\cdot\text{rad}$ 이상이어야 하며 $\theta=40^\circ$ 까지 또는 침수각이 40° 미만인 경우에는 침수각 θ_f 까지는 $0.09\text{m}\cdot\text{rad}$ 이상이어야 한다.

추가로 횡경사각이 30° 와 40° 의 사이에서 또는 이 각이 40° 미만인 경우 θ_f 및 40° 사이에서 복원정곡선(GZ곡선) 아래의 면적은 $0.03\text{m}\cdot\text{rad}$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θ_f 는 풍우밀로 개폐할 수 없는 선체, 선루 또는 갑판실의 개구가 잠길 때의 경사각도이다)

나) 30° 이상의 횡경사각에서 복원정 GZ는 적어도 0.20m 이상이어야 한다.

다) 최대복원정은 30° 를 초과하는 횡경사각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람직하고 25° 미만에서 나타나서는 아니 된다.

라) 횡경사 0° 에서 측정된 자유표면에 대하여 보정된 초기의 메타센터 높이(GM₀)는 0.15m 이상이어야 한다.

나. 가목의 요건은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다만, 겸용선은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3. 육상에 갖추어야 할 복원성 프로그램

재화중량톤수 5천톤 이상의 유조선의 소유자는 육상에 전산화된 손상복원성 및 잔존강도에 대한 계산 프로그램을 갖추고, 해당선박이 사고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복원성 계산기기

가. 총톤수 150톤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유조선의 소유자는 법 제112조 제1항제3호에 따라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승인을 받은 복원성 계산기기를 해당 유조선에 비치해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복원성 계산기기는 국제해사기구에서 권고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하고 손상복원성 및 비손상 복원성 검증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원성 계산기기를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 1) 「선박안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예상 가능한 모든 적재 상태를 포함하여 승인받은 복원성자료가 선장에게 제공된 선박
- 2) 법 제1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방법에 따라 원격으로 복원성 검증이 가능한 선박
- 3) 제1호에 따른 복원성기준을 갖추고 「선박안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복원성자료를 승인받은 선박으로서, 그 승인한 허용범위 내의 적하상태로 운항하는 선박
- 4) 제1호에 따른 복원성기준을 갖추고 「선박안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복원성자료를 승인받은 선박으로서, 그 손상복원성 및 비손상 복원성을 검증할 수 있는 허용 흘수별 최대허용 수직무게중심(KG)/흘수별 최소 운항 메터센터 높이(GM) 곡선 또는 표가 비치된 선박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15] <개정 2019. 2. 13.>

유해액체물질의 오염방지설비(제16조제1항 관련)

| 물질의 구분 |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 |
|----------|---|
| 1. X류 물질 | 가. 스트리핑장치
나. 예비세정장치
다. 유해액체물질·선박평형수 등의 배출관장치
라. 수면하 배출장치
마. 통풍세정장치(제12조제1항에 따른 정화방법에 따라 화물창을 정화하는 선박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
| 2. Y류 물질 | 가. 스트리핑장치
나. 예비세정장치(응고성물질 또는 고점성물질을 운송하는 선박으로 한정한다)
다. 유해액체물질·선박평형수 등의 배출관장치
라. 수면하 배출장치
마. 통풍세정장치 |
| 3. Z류 물질 | 가. 스트리핑장치
나. 유해액체물질·선박평형수 등의 배출관장치
다. 수면하 배출장치
라. 통풍세정장치 |

비고

1. 위 표에도 불구하고 잔류물의 배출방법이 별표 5 제8호나목의 배출해역·예비세정방법 및 배출방법에 따른 수면하 배출방법이 요구되지 않는 선박은 수면하 배출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화물창에 선박평형수를 적재하지 않고 수리나 입거 시에만 화물창을 세정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와 운항특성을 가지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승인을 받은 선박의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는 유해액체물질·선박평형수 등의 배출관장치로만 할 수 있다.
3. 위 표에도 불구하고 국내항해에 종사하고 제12조에 따른 배출방법으로 세정된 선박평형수를 배출하는 선박의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는 통풍세정장치 및 유해액체물질·선박평형수 등의 배출관장치로만 할 수 있다.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16] <개정 2015.1.8.>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제16조제2항 관련)

1. 예비세정장치(Pre-washing system)

가. 예비세정장치는 다음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1) 세정기
- 2) 세정기용 펌프
- 3) 세정기용 배관
- 4) 세정수가열장치: 용고성 물질 또는 용고성 물질 외의 유해액체물질(이하 “비용고성 물질”이라 한다)로서 20℃에서 50mPa·s 이상의 점도를 가지는 물질의 운송에 사용되는 선박으로 한정한다.

나. 세정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유해액체물질에 대하여 충분한 내식성을 가질 것
- 2) 화물창안을 세정하기 위한 충분한 성능을 가질 것
- 3) 세정 중에 세정기의 작동여부를 화물창의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다만, 음향 등으로 세정기의 작동상황이 확인될 수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용고성 물질 또는 X류 물질인 비용고성 물질의 운송에 사용되는 화물창에 설치하는 세정기는 화물창의 표면을 세정할 수 있도록 배치될 것
- 5) 수평면으로부터 임의의 방향에 22.5도를 경사시킨 상태에서도 그 성능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할 것
- 6) 선박의 항해 중에 발생하는 요동·진동 등으로 인하여 그 성능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할 것

다. 세정기용 펌프는 충분한 세정수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세정기용 배관은 선체에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다만, 선박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장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세정수가열장치는 세정수를 가열하는 성능이 있어야 한다.

2. 유해액체물질·선박평형수 등의 배출관장치

가. 수용시설로 배출하는 배출구를 가질 것

나. 수용시설로 배출하는 배출용 매니폴드를 노출된 갑판상의 선측양현에 갖추고 있을 것

3. 수면하 배출장치

가. 수면하 배출장치는 다음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1) 흡수선 아래의 배출구
- 2) 배출용 펌프
- 3) 배출용 배관

나. 수면하 배출구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한쪽 선측에 대하여 2개 이상 설치되어 있지 아니할 것
- 2) 가장 얇은 흡수의 상태에서 흡수선보다 아래쪽의 만곡부 부근의 선측에 설치되어 있을 것
- 3) 배출된 유해액체물질과 해수의 혼합물이 해수흡입구로 흡입될 우려가 없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을 것
- 4) 구경이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값 이상일 것. 다만, 배출구의 주변구조를 고려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장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d = \frac{Qd}{5Ld}$$

d: 흡수선 아래의 배출구 최소 구경(m)

Ld: 전부수선에서 흡수선 아래의 배출구까지의 거리(m)

Qd: 배출용 펌프의 시간당 최대배출용량(m³)

다. 배출용 펌프는 유해액체물질을 배출하기 위한 충분한 능력을 가져야 한다.

라. 배출용 배관은 다른 배관과의 연결을 차단시킬 수 있는 밸브 그 밖의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4. 통풍세정장치(Ventilation equipment for residue removal)

가. 통풍세정장치는 다음의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1) 통풍기
- 2) 확인장치

나. 통풍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1) 유해액체물질 및 불활성가스에 대하여 충분한 내식성이 있을 것
- 2) 화물창 및 배관 안을 세정하기 위한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 3) 화물창 및 배관 안을 세정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을 것

다. 확인장치는 화물창 및 배관 안의 통풍세정장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5. 스트리핑장치(stripping system)

가. 스트리핑장치는 다음의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 스트리핑펌프(stripping pump)

2) 블로우잉장치(선박의 구조상 필요 없는 선박은 제외한다)

나. 스트리핑펌프는 화물창의 바닥부분 및 배관에 잔류하는 유해액체물질을 흡입할 수 있는 충분한 성능이 있어야 한다.

다. 블로우잉장치는 화물창의 배관에 잔류하는 유해액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성능이 있어야 한다.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16의2] <신설 2023. 9. 1.>

전자기록부의 설비 및 보안 등에 관한 기술요건(제24조의2제2항 관련)

1. 공통기준

법 제30조의2에 따라 전자기록부를 사용하려는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별로 전자기록부에 대한 적합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2. 하드웨어의 기술요건

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의 하드웨어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정한 60092 및 60533 국제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나. 전자기록부 시스템은 기록문서와 같은 수준의 정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UPS 등과 같은 별도의 전원 공급 장치를 갖춰야 한다.

3. 소프트웨어의 기술요건

가. 기능

1) 소프트웨어는 기록물을 저장할 때 관련 항목의 입력을 완료하지 않았을 때 해당 기록물의 저장 처리를 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프트웨어는 위치, 시간 등 메타 데이터를 자동으로 입력하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 입력 기능의 고장을 고려하여 수동 입력 기능을 포함시켜야 한다.

3) 소프트웨어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안 관련 감사 로그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가) 접속 에러

나) 요청 에러

다) 시스템 이벤트

라) 백업 및 복구 이벤트

마) 구성 변경

바) 감사 로그 이벤트

4) 감사 로그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가) 타임스탬프

나) 소스(발신 장비, 소프트웨어, 사용자 계정)

다) 카테고리

라) 형식

마) 이벤트 ID

바) 이벤트 결과

5) 소프트웨어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기록부, 별지 제3호서식의 기름기록부, 별지 제4호서식의 유해액체물질기록

부 및 별지 제5호의9서식의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로 구성되어야 한다.

- 6) 소프트웨어는 국제협약 부속서 1 부록 3(기름기록부), 국제협약 부속서 2 부록 2(유해액체물질기록부), 국제협약 부속서 5 부록 2 (폐기물기록부)에 따라 전자기록부 승인에 관한 지침서를 정형화된 형태로 인쇄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7) 소프트웨어는 기록을 처리할 때 담당자의 서명을 요구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8) 소프트웨어는 페이지별로 선장의 서명을 요구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9) 소프트웨어는 일시·작성자 또는 항목 등의 요건별로 검색 또는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선장의 자격이나 신원 확인이 된 경우에만 검색 또는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10) 소프트웨어는 최초 기록, 변경 및 검증된 항목을 시간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11)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입력한 현재 상태(보류·검증 대기 또는 검증 완료 등)를 파악할 수 있는 지원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12) 소프트웨어는 선박이 입항하기 전에 미승인된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승인 요청 통지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해당 선박의 선장이 미승인된 항목의 사유를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13) 소프트웨어는 기록물 관리를 위해 다음의 항목을 첨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가)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영수증 등의 서류
 - 나) 화물과 관련된 기록부 증서 또는 인증서 등의 서류
- 14) 소프트웨어는 기록문서와 같은 수준의 정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가) 별도의 오프라인 저장장치에 시스템의 백업(back up)을 할 수 있는 기능. 이 경우 시스템 백업 프로세스는 소프트웨어의 정상적인 작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 나) 별도의 저장장치에 백업된 정보의 복원을 시작하기 전에 그 백업된 정보의 무결성을 확인하는 기능
 - 다) 항목을 변경할 때마다 별도의 저장장치에 복원하는 기능

나. 보안

- 1) 소프트웨어는 사용자, 시스템 및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해 시스템 수준의 백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백업 프로세스는 소프트웨어의 정상적인 작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 2) 소프트웨어는 접근 권한의 할당이 가능하도록 공식적인 사용자 등록과 해지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3) 소프트웨어는 모든 사용자 유형에 대한 접근 권한을 할당하거나 폐지하기

위해 공식적인 사용자 접근 권한 설정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4) 소프트웨어는 특수 접근 권한에 대한 할당과 사용을 제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5) 소프트웨어는 다음의 자격증명방법에 따라 인증자 관리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가) 할당된 비밀 인증정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소 길이 및 다양한 문자 유형으로 구성 가능한 비밀번호에 대한 강도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나) 공개 키(Public key) 기반 인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개 키 기반 구조의 영역 범위에서 상호작용하고 작동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다) 대칭 키(Symmetric key) 기반 인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능을 포함시켜 제공해야 한다.

(1) 대칭 키를 사용하는 상호 신뢰 확립 기능

(2) 공유 암호의 안전한 저장 기능. 이 경우 공유된 암호가 비밀로 유지되면 인증은 유효하다.

(3) 공유된 비밀에 대한 접속 차단 기능

(4) 대칭 키의 인증에 사용되는 알고리즘, 국제적으로 인정되거나 입증된 보안 관행 및 권장사항에 따른 암호화 보안 매커니즘

라) 그 밖에 국제적으로 인정되거나 입증된 자격 증명 매커니즘

6) 소프트웨어에 적용된 전자서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인증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7) 소프트웨어는 무단으로 물리적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변조 방지나 감지 매커니즘을 제공해야 한다.

8) 소프트웨어는 인가되지 않은 물리적 접근이 시도되었을 때에는 해당 수신인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하고, 모든 변경 통지는 전체 감사 기록의 일부로 저장되어야 한다.

다. 데이터

1) 전자기록부는 선박 내 다른 전자기록부와 연계하여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출력할 수 있도록 데이터 형식을 구성해야 한다.

2) 기록물은 마지막으로 기재된 날부터 3년간 분실, 파손, 위조, 비인가 접근 또는 비인가 공개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3) 소프트웨어는 기록물의 무결성(無缺性) 검사를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해당 검사 결과는 별도로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4) 소프트웨어는 기록물의 무결성 검사 시 무단으로 변경을 시도한 사실을 발견하면 자동으로 통지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5) 허가된 기록물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가) 사용자 계정 및 선장의 승인 등을 포함한 변경 이력 관리 기능

나) 기록 출력물 내 변경 여부 표시 기능

다) 선장의 재검증(보완 또는 재검증 등) 결과 통지

6) 오프라인 저장매체에 저장되는 기록물은 다음과 같다.

가) 암호화되어 정보에 대한 무단 접속이 불가능하고 데이터가 저장되면 기록이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읽기 전용 형식으로 저장할 것

나) 한 저장소에서 다른 저장소로 복사할 수 있는 형식일 것

다) 기록물이 무결하고 지속적으로 보관 가능한 형식으로 유지될 것

라) 기록물 출력 및 인쇄가 가능한 형식일 것

7) 오프라인 저장장치에 관리되는 기록물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형식을 따라야 하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선장의 디지털 서명(성명 및 타임스탬프)

나) 휴대전자문서(PDF) 포맷 형식

다) 휴대전자문서(PDF) 포맷 형식이 아닌 경우에는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인쇄 또는 읽기가 가능한 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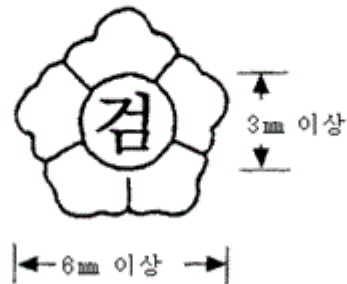
라. 유지보수

1) 소프트웨어는 국제협약의 개정에 따라 업데이트를 지원해야 한다.

2) 1)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는 개정된 국제협약의 발효 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17] <개정 2011.12.23>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등의 검인표시
(제26조제2항, 제27조의2제4항 및 제37조의2제4항 관련)



비고

위의 검인표시외에 검인일자와 검인기관의 약호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17의2] <개정 2023. 9. 1.>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기재사항(제27조의2제2항 관련)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는 국제해사기구(IMO)의 “기름오염방지를 위한 매뉴얼(Manual on Oil pollution, Section I, Prevention)” 및 국제해운회의소(ICS)와 국제석유회사해사평의회(OCIMF)의 “선박대선박 석유이송을 위한 지침서(Ship-to-Ship Transfer Guide, Petroleum)”를 참조하여 작성하고,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이송 조건에 관한 사항

- 가. 사용되는 연결구의 규격에 관한 사항 및 호환되는 연결구에 관한 사항
- 나.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이송장소 관할청으로부터 승인된 사항
- 다.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이송을 위한 해상조건

2. 안전에 관한 사항

- 가. 안전훈련에 관한 사항
- 나. 작업 단계별 점검표
- 다. 위험사항 발생 시 조치
- 라.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이송 중 안전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당직 및 헬리콥터 운용에 관한 사항

3. 의사소통에 관한 사항

- 가. 사용언어
- 나. 선박의 접근, 계선, 분리(unmooring) 및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이송작업 중의 통신에 관한 사항
- 다. 통신장애 시 대응절차

4.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이송작업준비에 관한 사항

5. 선박의 조종 및 계선법에 관한 사항

- 다.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이송을 위한 계획
 - 라.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이송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
 - 마.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이송 후 작업에 관한 사항
7. 선박분리(unmooring) 절차 및 점검사항
8.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이송작업에 필요한 장비에 관한 사항
- 가. 완충장치, 호스, 계선설비, 조명, 현측사다리 및 보조장치 등에 관한 사항
 - 나. 장비의 대표적인 목록
9.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18]

방오시스템의 사용기준 및 방법(제29조 관련)

1. 사용기준

- 가. 생물파괴제(Biocides)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수준의 방오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나. 건조페인트(dry paint) 안에 총 주석함량이 2,500mg/kg을 초과하는 생물파괴제로 작용하는 유기주석 화합물이 포함된 방오도료 또는 방오시스템은 사용할 수 없다.

2. 적용방법

이 법 시행 전에 건조된 선박으로서 생물파괴제(Biocides)로 작용하는 유기주석화합물이 포함된 방오시스템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 가. 선체 외부 또는 표면에 남아 있지 아니하게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 나. 기존의 도장을 완전히 제거하지 아니하려면 이미 칠하여진 페인트를 덧칠하여 외부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19]

선박의 대기오염방지 관련 설비(제30조제1항 관련)

1.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

- 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이미 설치된 설비에서 오존층파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지·작동하여야 한다.
- 나.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는 새로 설치할 수 없다.

2.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을 위한 설비

디젤기관은 별표 20 제1호에 적합한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이거나 별표 20 제2호에 적합한 질소산화물배출방지용 배기가스정화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를 설치한 디젤기관이어야 한다.

3. 황산화물 배출 저감 설비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으로서 법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른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는 선박은 별표 20 제3호에 적합한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방지 설비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항만에서 제3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물질을 싣고자 하는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은 별표 20 제4호에 적합한 유증기수집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선박 안의 소각기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선박의 항해 중에 발생하는 물질을 선박 안에서 소각하고자 하는 선박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선내소각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가. 일반형 선내소각기 또는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선내소각기

- 1) 2006년 6월 29일 전에 건조된 선박이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경우
- 2) 2000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경우

- 나.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선내소각기

- 1) 2006년 6월 29 이후에 건조된 선박이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경우
- 2) 2000년 1월 1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경우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20] <개정 2020. 11. 19.>

대기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 (제30조제2항 관련)

1.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은 디젤기관(이하 이 호에서 “기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검사 및 측정하여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이하 “질소산화물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장치를 갖추거나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가. 기관의 검사

기관에 대한 질소산화물 배출검사는 다음의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1) 장소에 상관없이 시험대에서 실시할 것
- 2) 기관페밀리 및 기관그룹의 표본기관에 한하되, 다음에 따라 시험할 것
 - 가) 질소산화물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조정할 것
 - 나)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을 측정할 것

나. 시험주기

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소산화물기술코드(NOx Technical Code 2008)에 따른 시험주기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 1) 정속도 주기관과 가변피치 프로펠러 장치에 사용되는 기관: E2형 시험주기
- 2) 프로펠러 법칙에 따라 작동되는 주기관 및 보조기관: E3형 시험주기
- 3) 정속도 보조기관: D2형 시험주기
-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속도 또는 부하가 변화하는 보조기관: C1형 시험주기

다. 배기가스분석기

배기가스를 분석할 때는 다음의 분석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1) 일산화탄소(CO)분석기: 흡수식비분산적외선분석기(NDIR)
- 2) 이산화탄소(CO₂)분석기: 흡수식비분산적외선분석기(NDIR)
- 3) 산소(O₂)분석기: 지르코늄이산화물감지기(ZRDO), 전기화학적감지기(ECS) 또는 상자성감지기(PMD). 다만, 지르코늄이산화물감지기(ZRDO)는 이중연료 또는 가스연료엔진에는 사용할 수 없다.
- 4) 질소산화물(NOx)분석기
 - 가) 건조 상태에서 측정하는 경우에는 일산화질소(NO) 및 이산화질소(NO₂) 변환기를 장착한 화학발광분석기(CLD) 또는 가열화학발광분석기(HCLD)
 - 나) 습한 상태에서 측정하는 경우에는 55℃에서 200℃ 사이에서 보존·유

지된 변환기를 가진 가열화학발광분석기(HCLD) [수증기퀀치점검(Quench check)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5) 탄화수소(HC)분석기: 배기가스 온도가 $190^{\circ}\text{C} \pm 10^{\circ}\text{C}$ 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가열된 감지기, 밸브 및 관련 구성품을 갖춘 가열식 불꽃이온감지(HFID)형식이어야 한다. 다만, 점화용 액체연료를 분사하지 않는 가스연료엔진에 사용되는 탄화수소분석기는 비가열식 불꽃이온감지(FID)형식이어야 한다.

라. 배기가스유량의 측정

배기가스유량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1) 직접측정방법

유량노즐 또는 이와 동등한 측정시스템으로 배기가스유량을 직접 측정할 것

2) 공기 및 연료 측정방법

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공기 및 연료의 소모량을 측정하여 배기가스유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할 것

나) 공기 및 연료의 소모량 측정은 공기소비량측정기와 연료소비량측정기를 사용할 것

3) 연료유량 및 탄소비교방법

질소산화물기술코드 부록 6의 탄소 비교법에 따라 연료소비량, 연료성분 및 배기가스 농도로부터 배기가스유량을 계산할 것

마. 배기가스의 측정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₂),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_x) 및 산소(O₂) 등의 주요 배기가스성분을 측정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바. 가스배출량의 평가

가스배출량의 평가는 각 부하에서 최종 60초의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₂),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_x) 및 산소(O₂)의 평균측정값과 그에 상응하는 분석기의 발생오차 값을 보정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사. 그 밖에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에 대한 용어의 정의, 기관페밀리 및 기관 그룹의 구분과 표본기관의 선정기준 등은 질소산화물기술코드에 따라야 한다.

2. 질소산화물배출방지용 배기가스정화장치

질소산화물배출방지용 배기가스정화장치는 제1호에 따른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디젤기관에 설치하여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질소산화물배출허용기준 이하로 감축할 수 있도록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황산화물 배출제한기준량 (이하 이 표에서 “황산화물배출제한기준량”이라 한다) 이하로 황산화물 배출량이 감축될 수 있도록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어떤 부하점(load point)에서도 황산화물의 배출량이 황산화물배출제한기준량 이하일 것

나. 다음 사항이 포함된 기술설명서가 사용자에게 제공될 것

1)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 및 필요한 보조장치의 설명서, 제조자·모델·형식·제조번호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

2) 배기가스의 최대 및 최소 질량 유동율

3) 출력·형식,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는 보일러 또는 디젤기관의 연료유 연소장치의 관련 변수 및 다음의 내용

가) 보일러: 100% 부하에서 최대 연료량에 대한 공기량 비율

나) 디젤기관: 기관의 사이클(2사이클 또는 4사이클)

4) 최대 및 최소 세정수의 유동율·유입압력, 유입수의 최소 알칼리도(pH)

5) 배기가스의 유입온도 범위

6) 배기가스의 유입 및 배출압력의 범위

7) 황산화물배출제한기준량 이하의 값을 얻기 위한 설계 및 운전에 관한 사항

8) 황산화물용배기가스정화장치의 제한조건 또는 배출값이 황산화물배출제한기준량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정비·서비스 및 조정기준

9) 성능을 유지하고 계속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점검 수단

10) 전 범위에 걸친 세정수 특성에 따른 성능변화 및 세정수장치의 설계기준

다. 주 추진용 디젤기관에 설치되는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는 기관의 25~100% 사이의 모든 부하범위에서 가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라. 보조 디젤기관에 설치되는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는 기관의 10~100% 사이의 모든 부하범위에서 가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마. 주 추진 및 보조기관에 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디젤기관에 설치되는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는 라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바. 보일러에 설치되는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는 보일러의 10~100% 사이의 모든 부하범위에서 가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사.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 이하의 부하에서도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는 지속적으로 운전될 것. 이 경우 연료유 연소장치가 공회전 상태로 운전이 요구될 경우는 표준산소농도(디젤기관 15%, 보일러 3%)에서 이산화황(SO₂)

의 배출 농도는 0.005%를 초과하면 아니 된다.

- 아. 선박의 운항 중 이산화황의 배출율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수단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직접감시장치(direct monitoring system)를 설치하거나 이산화탄소(%)에 대한 이산화황(ppm)의 비율을 통한 배기가스의 질을 무작위로 확인하여 적합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일 것
- 자. 아목에 따른 기록 수단 및 직접감시장치는 견고하고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서 읽기전용의 것일 것
- 차. 배출되는 세정수를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 것
- 카. 선상 감시 절차서(on-board monitoring manual)가 각각의 연소장치마다 제공되어 각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가 식별되고 적합성이 실증될 수 있는 것일 것
- 타. 세정수 배출기준에 맞을 것
- 파. 다목에서 바목까지의 부하시험을 하지 않은 장치를 선박에 설치하고 황산화물 배기가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검사와 배출시험으로 가목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할 것
- 하. 그 밖에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에 대한 용어의 정의, 장치의 승인범위, 배기가스 측정 절차, 모니터링 장비 및 세정수의 기준 등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4. 유증기수집제어장치

- 가. 유증기수집제어장치는 선박으로부터 유증기의 수집을 제어하기 위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1) 선박에서 발생하는 유증기를 대기 중으로 방출하지 아니하고 육상으로 보내기 위하여 관장치, 산소농도계측 감시장치(불활성가스 발생장치가 설치된 선박만 해당한다) 및 압력감시장치가 있는 것일 것
 - 2) 고정 배관된 증기연결구는 가능한 한 적하 매니폴드 가까운 위치에 설치된 것일 것
 - 3) 서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종류의 화물로부터 증기를 동시에 수집할 경우 모든 증기수집장치는 서로 분리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일 것
 - 4) 관장치의 낮은 위치에 드레인 배출 또는 응축된 액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드레인 밸브 등이 설치된 것일 것
 - 5) 증기수집 관장치는 선체와 전기적으로 접지가 되어야 하고 전기적으로 연속성을 가질 것
 - 6) 불활성가스 공급관을 증기수집관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증기수집관과 불활성가스 공급관을 분리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된 것일 것

7) 증기수집장치는 화물창 벤트장치의 정상적인 작동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일 것

나. 증기관 연결구, 화물계측설비, 탱크 고액면 경보장치, 증기의 과압 및 부압 보호에 대한 기술기준은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5. 일반형 선내소각기

일반형 선내소각기는 별표 8 제14호에 따른 소각기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6.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선내소각기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선내소각기는 별표 8 제14호에 따른 소각기의 기술기준 및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소각기의 용량은 4천kW 이하일 것

나. 배출가스의 산소 함유량이 6% 이상 12% 미만일 것

다. 연소가스가 출구로부터 2.5m 이내에서 350℃까지 급속 냉각될 것

라. 출구의 연소가스의 온도가 850℃ 이상 1천2백℃ 미만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마. 출구 온도 및 산소함유량은 연소 중에 측정되도록 할 것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20의2] <개정 2023. 9. 1.>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및 선박에너지효율지수 계산 대상선박(제30조의2제1항
본문 및 제30조의6제1항 본문 관련)

-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 대상선박 및 선박에너지효율지수 계산 대상선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아목은 선박에너지효율지수 계산 대상선박에서 제외한다.
 - 산적화물선(散積貨物船)
 - 가스운반선
 - 유조선등
 - 컨테이너선
 - 일반화물선[가축운반선(livestock carrier), 부선(barge carrier), 중구조물 운반선(heavy load carrier), 요트운반선(yacht carrier), 핵연료운반선(nuclear carrier)은 제외한다]
 - 냉동화물운반선
 - 겸용선
 - 여객선
 - 로로화물선(차량운반선)
 - 로로화물선[로로화물수송유니트(roll-on-roll-off cargo transportation units)운반선]
 - 로로여객선
 -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 크루즈여객선
-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중에서 비전통추진방식을 가진 선박과 선박의 종류와 관계없이 극지해역 운항선박에 관한 국제규정(Polar Code)에서 정한 범주A 선박(다년생 얼음을 포함하여 최소한 중간 정도 두께의 일년생 얼음이 있는 극지해역의 운항을 위해 설계된 선박을 말한다)은 제1호에 따른 계산 대상선박에서 각각 제외한다.

※ 비고

이 별표(별표 20의3, 별표 20의5 및 별표 20의6을 포함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산적화물선(散積貨物船)"이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 제12장제1규칙에 따른 선박으로서 광석운반선을 포함하여 주로 산적상태의 건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겸용선은 제외한다.
- "가스운반선"이란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외에 액화가스를 산적상태로 운송하는 데 사용하도록 건조되거나 개조된 화물선을 말한다.
- "유조선등"이란 유조선, 국제협약 부속서 제2장제1규칙에 따른 위험화학품산적

운송선(chemical tanker) 및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NLS tanker)을 말한다.

4. "컨테이너선"이란 화물창과 갑판에 컨테이너를 운송하도록 설계된 선박을 말한다.
5. "일반화물선"이란 다중갑판 또는 단일갑판 선체구조를 가진 선박으로서 주로 일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선박을 말한다.
6. "냉동화물운반선"이란 화물창 내에 냉장화물을 운송하도록 설계된 선박을 말한다.
7. "여객선"이란 13명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을 말한다.
8. "로로화물선(차량운반선)"이란 비어 있는 자동차 및 트럭을 운송하도록 설계된 다중갑판 구조를 가진 선박을 말한다.
9. "로로화물선[로로화물수송유니트(roll-on-roll-off cargo transportation units)운반선]"이란 로로화물수송유니트를 운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선박을 말한다.
10. "로로여객선"이란 로로화물구역을 가진 여객선을 말한다.
11.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이란 액화천연가스를 산적상태로 운송하는 데 사용하도록 건조되거나 개조된 화물선을 말한다.
12. "크루즈여객선"이란 화물갑판을 가지지 않는 여객선으로 여객의 숙박 및 운송을 위해 설계된 선박을 말한다.
13. "비전통추진방식"이란 왕복내연기관으로 작동되며 직접 또는 기어 박스를 통해 추진축에 결합하여 추진하는 전통추진방식 외에 디젤 및 전기 추진방식, 터빈 추진방식 및 하이브리드 추진방식을 말한다.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20의3] <개정 2023. 9. 1.>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및 적용대상 선박(제30조의3제1항 및 제2항 관련)

1.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은 다음 표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선박이 2가지 이상의 선박의 종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낮은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을 해당 선박의 허용값으로 한다.

$$\text{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 \left(1 - \frac{\text{감축계수}}{100}\right) \times \text{기준선 값}$$

비고

1. 이 별표 제1호의 계산식 중 감축계수는 아래 표에 따른다.

| 선박 종류 | 톤수 | 감축계수 | | | |
|-------|--------------------------------|------|------|------|------|
| | | 0단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산적화물선 | 2만톤 이상
(재화중량톤수) | 0 | 10 | 20 | 30 |
| | 1만톤 이상
2만톤 미만
(재화중량톤수) | 적용제외 | 0~10 | 0~20 | 0~30 |
| 가스운반선 | 1만5천톤 이상
(재화중량톤수) | 0 | 10 | 20 | 30 |
| | 1만톤 이상
1만5천톤 미만
(재화중량톤수) | 0 | 10 | 20 | 30 |
| | 2천톤 이상
1만톤 미만
(재화중량톤수) | 적용제외 | 0~10 | 0~20 | 0~30 |
| 유조선동 | 2만톤 이상
(재화중량톤수) | 0 | 10 | 20 | 30 |
| | 4천톤 이상
2만톤 미만
(재화중량톤수) | 적용제외 | 0~10 | 0~20 | 0~30 |
| 컨테이너선 | 20만톤 이상 | 0 | 10 | 20 | 50 |

| | | | | | |
|--|--------------------------------|------|------|------|-------|
| | (재화중량톤수) | | | | |
| | 12만톤 이상
20만톤 미만
(재화중량톤수) | 0 | 10 | 20 | 45 |
| | 8만톤 이상
12만톤 미만
(재화중량톤수) | 0 | 10 | 20 | 40 |
| | 4만톤 이상
8만톤 미만
(재화중량톤수) | 0 | 10 | 20 | 35 |
| | 1만5천톤 이상
4만톤 미만
(재화중량톤수) | 0 | 10 | 20 | 30 |
| | 1만톤 이상
1만5천톤 미만
(재화중량톤수) | 적용제외 | 0~10 | 0~20 | 15~30 |
| 일반화물선
(별표 20의2
제1호마목에
따른 일반화물
선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
에서 같다) | 1만5천톤 이상
(재화중량톤수) | 0 | 10 | 15 | 30 |
| | 3천톤 이상
1만5천톤 미만
(재화중량톤수) | 적용제외 | 0~10 | 0~15 | 0~30 |
| 냉동화물
운반선 | 5천톤 이상
(재화중량톤수) | 0 | 10 | 15 | 30 |
| | 3천톤 이상
5천톤 미만
(재화중량톤수) | 적용제외 | 0~10 | 0~15 | 0~30 |
| 점용선 | 2만톤 이상
(재화중량톤수) | 0 | 10 | 20 | 30 |
| | 4천톤 이상
2만톤 미만
(재화중량톤수) | 적용제외 | 0~10 | 0~20 | 0~30 |
| 로로화물선
(차량운반선) | 1만톤 이상
(재화중량톤수) | 적용제외 | 5 | 15 | 30 |
| 로로화물선
법제처 | 2천톤 이상 | 적용제외 | 5 | 20 | 30 |

| | | | | | |
|---------------------------|---------------------------------|----------|-----|------|------|
| (로로화물
수송유니트
운반선) | (재화중량톤수) | | | | |
| | 1천톤 이상
2천톤 미만
(재화중량톤수) | 적용
제외 | 0~5 | 0~20 | 0~30 |
| 로로여객선 | 1천톤 이상
(재화중량톤수) | 적용제외 | 5 | 20 | 30 |
| | 250톤 이상
1천톤 미만
(재화중량톤수) | 적용제외 | 0~5 | 0~20 | 0~30 |
| 액화천연가스
(LNG)운반선 | 1만톤 이상
(재화중량톤수) | 적용제외 | 10 | 20 | 30 |
| 비전통추진
방식을 가진
크루즈여객선 | 8만5천톤 이상
(국제총톤수) | 적용제외 | 5 | 20 | 30 |
| | 2만5천톤 이상
8만5천톤 미만
(국제총톤수) | 적용제외 | 0~5 | 0~20 | 0~30 |

2. 비고 제1호의 표에서 “비전통 추진방식”이란 왕복내연기관으로 작동되며 직접 또는 기어 박스를 통해 추진축에 결합하여 추진하는 전통추진방식 외에 디젤 및 전기 추진방식, 터빈 추진방식 및 하이브리드 추진방식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3. 비고 제1호에 따른 감축계수는 다음 각 목의 구분과 같이 적용한다.

가. 건조하는 선박에 대한 감축계수

1) 2013년 1월 1일 전에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2013년 1월 1일 전에 용골이 거치되거나 동등한 건조단계에 착수한 선박)

가) 2015년 7월 1일 전에 인도된 선박: 적용제외

나) 2015년 7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인도된 선박: 0단계

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인도된 선박: 1단계

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인도된 선박: 2단계

마) 2026년 4월 1일 이후 인도된 선박: 3단계

2)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2013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용골이 거치되거나 동등한 건조단계에 착수한 선박)

가) 2015년 7월 1일 전에 인도된 선박: 0단계

나) 2015년 7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인도된 선박: 0단계

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인도된 선박: 1단계

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인도된 선박: 2단계

마) 2026년 4월 1일 이후 인도된 선박: 3단계

3)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2015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용골이 거치되거나 동등한 건조단계에 착수한 선박)

가) 2015년 7월 1일 전에 인도된 선박: 1단계

나) 2015년 7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인도된 선박: 1단계

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인도된 선박: 1단계

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인도된 선박: 2단계

마) 2026년 4월 1일 이후 인도된 선박: 3단계

4)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용골이 거치되거나 동등한 건조단계에 착수한 선박)

가)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인도된 선박: 2단계

나)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인도된 선박: 2단계

다) 2026년 4월 1일 이후 인도된 선박: 3단계

5) 2022년 4월 1일 이후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2022년 10월 1일 이후 용골이 거치되거나 동등한 건조단계에 착수한 선박)은 감축계수 3단계를 적용한다.

나. 비고 제3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이 별표 제2호나목(재화중량톤수 1만5천톤 이상인 선박에 한정한다)·라목·마목·카목 또는 타목의 선박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다음의 감축계수를 적용한다.

1) 2013년 1월 1일 전에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2013년 7월 1일 전에 용골이 거치되거나 동등한 건조단계에 착수한 선박)

가) 2015년 7월 1일 전에 인도된 선박: 적용제외

나) 2015년 7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인도된 선박: 0단계

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인도된 선박: 1단계

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인도된 선박: 2단계

마) 2029년 1월 1일 이후 인도된 선박: 3단계

2)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2013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용골이 거치되거나 동등한 건조단계에 착수한 선박)

가) 2015년 7월 1일 전에 인도된 선박: 0단계

나) 2015년 7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인도된 선박: 0단계

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인도된 선박: 1단계

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인도된 선박: 2단계

마) 2029년 1월 1일 이후 인도된 선박: 3단계

3)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2015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용골이 거치되거나 동등한 건조단계에 착수한 선박)

가) 2015년 7월 1일 전에 인도된 선박: 1단계

나) 2015년 7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인도된 선박: 1단계

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인도된 선박: 1단계

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인도된 선박: 2단계

마) 2029년 1월 1일 이후 인도된 선박: 3단계

4)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2020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용골이 거치되거나 동등한 건조단계에 착수한 선박)

가)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인도된 선박: 2단계

나)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인도된 선박: 2단계

다) 2029년 1월 1일 이후 인도된 선박: 3단계

5) 2025년 1월 1일 이후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2025년 7월 1일 이후 용골이 거치되거나 동등한 건조단계에 착수한 선박)은 감축계수 3단계를 적용한다.

다. 법 제4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조를 하는 선박에 대한 감축계수는 개조계약이 이루어진 시점(개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개조에 착수한 시점)의 건조하는 선박의 적용단계와 같다.

라. “적용제외”의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서는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을 적용받지 않는다.

마. 감축계수가 범위로 주어진 경우에는 선박의 크기에 따라 선형적으로 적용하며, 선박의 크기가 작을수록 낮은 감축계수 값을 적용한다.

바. 법 제41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개조를 하려는 선박의 감축계수는 해당 선박이 종전에 적용받았던 단계를 적용한다. 다만, 개조의 범위가 커서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를 재계산할 필요가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의 감축계수는 비고 제3호다목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4. 이 별표 제1호의 계산식에서 기준선 값은 다음 표의 계산식에 따른다.

기준선 값 = $a \times b^c$ ($a \cdot b$ 또는 c 의 값은 아래 표에 따른다)

| 선박의 종류 | a | b | c |
|--------|---|---|---|
|--------|---|---|---|

| | | | |
|-----------------------------|---|---|-----------------|
| 산적화물선 | 961.79 | 재화중량톤수 $\leq$
279,000인 경우:
재화중량톤수
재화중량톤수 $>$
279,000인 경우:
279,000 | 0.477 |
| 가스운반선 | 1,120.00 | 재화중량톤수 | 0.456 |
| 유조선등 | 1,218.80 | 재화중량톤수 | 0.488 |
| 컨테이너선 | 174.22 | 재화중량톤수 | 0.201 |
| 일반화물선 | 107.48 | 재화중량톤수 | 0.216 |
| 냉동화물운반선 | 227.01 | 재화중량톤수 | 0.244 |
| 겸용선 | 1,219.00 | 재화중량톤수 | 0.488 |
| 로로화물선
(차량운반선) | 재화중량톤수/국
제총톤수 < 0.3
재화중량톤수/국
제총톤수 ≥ 0.3 | (재화중량톤수/국제총
톤수) $^{-0.7} \times 780.36$
1812.63 | 재화중량톤수
0.471 |
| 로로화물선
(로로화물수송
유니트운반선) | 1405.15
1686.17* | 재화중량톤수
재화중량톤수 $\leq$
17,000인 경우:
재화중량톤수*
재화중량톤수 $>$
17,000인 경우:
17,000* | 0.498 |
| 로로여객선 | 752.16
902.59* | 재화중량톤수
재화중량톤수 $\leq$
10,000인 경우:
재화중량톤수*
재화중량톤수 $>$
10,000인 경우:
10,000* | 0.381 |
| 액화천연가스
(LNG)운반선 | 2253.7 | 재화중량톤수 | 0.474 |
| 비전통추진 방식을 | 170.84 | 국제총톤수 | 0.214 |

| | | | |
|-----------|--|--|--|
| 가진 크루즈여객선 | | | |
|-----------|--|--|--|

※ 비고: 위 표에서 *가 표시된 기준선 값은 감축계수 2단계부터 적용한다.

2.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적용대상 선박

- 가. 재화중량톤수 1만톤 이상 산적화물선
- 나. 재화중량톤수 2천톤 이상 가스운반선
- 다. 재화중량톤수 4천톤 이상 유조선등
- 라. 재화중량톤수 1만톤 이상 컨테이너선
- 마. 재화중량톤수 3천톤 이상 일반화물선
- 바. 재화중량톤수 3천톤 이상 냉동화물운반선
- 사. 재화중량톤수 4천톤 이상 겸용선
- 아. 재화중량톤수 1만톤 이상 로로화물선(차량운반선)
- 자. 재화중량톤수 1천톤 이상 로로화물선(로로화물수송유니트운반선)
- 차. 재화중량톤수 250톤 이상 로로여객선
- 카. 재화중량톤수 1만톤 이상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 타. 국제총톤수 2만5천톤 이상 비전통 추진방식을 가진 크루즈여객선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20의4] <개정 2023. 9. 1.>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기재사항, 작성방법 및 검사기준 (제30조의4제2항 및 제30조의7제3항 관련)

1. 기재사항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1) 선박에서의 에너지효율관리를 위한 조치
- 2) 선박에너지효율관리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
- 3) 목표 설정

나. 수립된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 1) 선박에서의 에너지효율관리 시행을 위한 시스템 수립
- 2) 에너지효율관리 시행 및 기록의 보존

다. 선박에너지효율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1) 선박에너지효율관리 시행에 대한 모니터링 도구
- 2) 선박에너지효율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수립

라.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의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마. 총톤수 5천톤 이상 선박의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계산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방법과 데이터 보고 절차에 관한 사항

2. 작성방법

가.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표지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1) 선박에 대한 다음의 정보. 다만, 마)부터 자)까지는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선박에 한정한다.

가) 선박명

나) 총톤수(Gross Tonnage)

다) 제화중량톤수(DWT)

라) 선박의 종류

마) 선박의 국제해사기구(IMO) 번호

바) 순톤수(Net Tonnage)

사) 주기관 및 보조기관 정격출력

아)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자) 대빙등급(Ice Class: 얼음으로 덮인 해역을 항해할 수 있는 선박임을 나타내는 등급으로서 극지해역 운항선박에 대하여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따라 부여된 등급을 말하며,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2)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작성일자 및 작성자

- 3) 수립된 계획의 시행 기간 및 시행자

- 4) 계획된 차기 평가일

나. 선박에서의 에너지효율관리를 위한 계획은 선박의 소유자 등이 수립한 다른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되어야 하고, 다음의 과정을 거쳐 수립한다. 이 경우 과정

을 진행하는 동안 현재 선박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사용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 1) 선박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선박 고유의 조치 식별
- 2) 식별된 선박 고유의 조치 중 해당 선박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의 식별 및 목록화
- 3) 과거 시행한 에너지효율 저감을 위한 조치의 식별 및 해당 조치의 효과를 분석하여 선박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치의 식별

다. 계획단계에서는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육상 및 선박의 모든 인원에게 교육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

라. 계획단계에서는 측정가능하고 이해가 쉬운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마. 시행단계에서는 계획단계에서 결정된 대책의 시행을 위한 시스템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사항을 기술하여야 하며, 이러한 시행 시스템은 계획단계에서 결정될 수도 있다.

- 1) 계획단계에서 결정된 대책의 시행방법
- 2)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책임자 지정

바. 시행에 관한 사항은 자체평가를 위해 문서로 보존하여야 하며, 대책이 시행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사. 선박의 에너지효율은 정량적으로 모니터링되도록 하여야 하며, 국제적인 기준과 수립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아. 국제해사기구가 개발한 선박에너지효율운항지수는 모니터링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며, 만일 다른 모니터링 도구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도구 및 방법이 계획단계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자. 모니터링 시스템 수립은 계획단계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집과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차. 선원에게 불필요한 행정 업무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모니터링 업무는 가능한 육상의 직원이 수행하여야 한다.

카. 개선된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개발을 위하여 선박 에너지관리에 대한 자체평가 절차를 개발하여야 하며, 자체 평가는 모니터링 업무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타. 선박의 에너지효율 관리를 위한 대책으로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 1) 연료 효율적인 운항
 - 가) 항해 계획의 개선
 - 나) 기상을 고려한 최적항로 결정
 - 다) 정시운항
 - 라) 선박 속력의 최적화
 - 마) 축마력(shaft power)의 최적화
- 2) 선박운항의 최적화
 - 가) 최적의 트림

- 나) 선박평형수의 최적화
 - 다) 프로펠러의 최적화
 - 라) 프로펠러 유입유동의 개선[핀(fin)이나 노즐의 이용 등]
 - 마) 조타장치와 항적조절시스템의 최적화(자동항법장치)
 - 3) 선체 유지보수
 - 4) 추진 시스템의 최적화
 - 가) 연료전지, 전자제어 도입 등
 - 나) 추진시스템의 유지보수
 - 다) 기관 효율 증가(연료유 첨가제 사용, 실린더 윤활유 소비량 조절 등)
 - 5) 폐열회수
 - 6) 선단 관리의 개선
 - 7) 화물 취급의 개선
 - 8) 에너지 관리의 개선(선내 전력공급시스템의 재검토, 냉동컨테이너 적하위치 최적화 등)
 - 9) 연료의 종류(대체 연료의 사용)
 - 10) 그 밖의 대책
 - 가) 풍력이나 태양전지(또는 광전지)와 같은 재생에너지의 적용
 - 나) 항만에서의 육상 전기 사용
 - 다) 연료유의 질 향상 등
- 파.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선박의 경우에는 에너지효율관리계획의 평가와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 1) 선박의 연료 사용량, 운항거리 및 운항시간에 대한 정보 수집 방법에 관한 사항
 - 2) 1)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 3) 선박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직접 측정하려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측정방법 및 측정기기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검사기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선박의 선박에너지효율관리 계획서는 국제협약 부속서 6 제26규칙에 따라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의 개발에 관한 지침에 따라 검사한다.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20의5] <신설 2023. 9. 1.>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 및 적용대상 선박(제30조의6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 관련)

1.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은 아래 표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선박이 2가지 이상의 선박의 종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낮은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을 해당 선박의 허용값으로 한다.

$$\text{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 = \left(1 - \frac{\text{감축계수}}{100}\right) \times \text{기준선 값}$$

비고

1. 이 별표 제1호의 계산식 중 감축계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이 경우 감축계수가 특정 범위로 설정된 경우에는 선박의 재화중량톤수에 따라 최소값 및 최대값 사이의 감축계수를 선형적으로 적용하며, 선박의 재화중량톤수가 적을수록 낮은 감축계수 값을 적용한다.

| 선박 종류 | 재화중량톤수(DWT) | 감축계수 |
|--|-----------------|--------|
| 산적화물선 | 20만톤 이상 | 15 |
| | 2만톤 이상 20만톤 미만 | 20 |
| | 1만톤 이상 2만톤 미만 | 0 ~ 20 |
| 가스운반선 | 1만5천톤 이상 | 30 |
| | 1만톤 이상 1만5천톤 미만 | 20 |
| | 2천톤 이상 1만톤 미만 | 0 ~ 20 |
| 유조선동 | 20만톤 이상 | 15 |
| | 2만톤 이상 20만톤 미만 | 20 |
| | 4천톤 이상 2만톤 미만 | 0 ~ 20 |
| 컨테이너선 | 20만톤 이상 | 50 |
| | 12만톤 이상 20만톤 미만 | 45 |
| | 8만톤 이상 12만톤 미만 | 35 |
| | 4만톤 이상 8만톤 미만 | 30 |
| | 1만5천톤 이상 4만톤 미만 | 20 |
| | 1만톤 이상 1만5천톤 미만 | 0 ~ 20 |
| 일반화물선(별표 20의 2 제1호마목에 따른 일반화물선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 | 1만5천톤 이상 | 30 |
| | 3천톤 이상 1만5천톤 미만 | 0 ~ 30 |

| | | |
|-----------------------------|-------------------------|--------|
| 다) | | |
| 냉동화물운반선 | 5천톤 이상 | 15 |
| | 3천톤 이상 5천톤 미만 | 0 ~ 15 |
| 겸용선 | 2만톤 이상 | 20 |
| | 4천톤 이상 2만톤 미만 | 0 ~ 20 |
| 로로화물선
(차량운반선) | 1만톤 이상 | 15 |
| 로로화물선
(로로화물수송유니트
운반선) | 2천톤 이상 | 5 |
| | 1천톤 이상 2천톤 미만 | 0 ~ 5 |
| 로로여객선 | 1천톤 이상 | 5 |
| | 250톤 이상 1천톤 미만 | 0 ~ 5 |
|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 1만톤 이상 | 30 |
| 비전통 추진방식을
가진 크루즈여객선 | 국제총톤수 8만5천톤 이상 | 30 |
| | 국제총톤수 2만5천톤 이상 8만5천톤 미만 | 0 ~ 30 |

2. 비고 제1호의 표에서 “비전통 추진방식”이란 왕복내연기관으로 작동되며 직접 또는 기어 박스를 통해 추진축에 결합하여 추진하는 전통추진방식 외에 디젤 및 전기 추진방식, 터빈 추진방식 및 하이브리드 추진방식을 말하며,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3. 이 별표 제1호의 계산식 중 기준선 값은 별표 20의3 제1호의 비고 제4호에 따른 기준선 값과 같다.

2.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 적용대상 선박

- 가. 재화중량톤수 1만톤 이상 산적화물선
- 나. 재화중량톤수 2천톤 이상 가스운반선
- 다. 재화중량톤수 4천톤 이상 유조선등
- 라. 재화중량톤수 1만톤 이상 컨테이너선
- 마. 재화중량톤수 3천톤 이상 일반화물선
- 바. 재화중량톤수 3천톤 이상 냉동화물운반선
- 사. 재화중량톤수 4천톤 이상 겸용선
- 아. 재화중량톤수 1만톤 이상 로로화물선(차량운반선)
- 자. 재화중량톤수 1천톤 이상 로로화물선(로로화물수송유니트운반선)
- 차. 재화중량톤수 250톤 이상 로로여객선
- 카. 재화중량톤수 1만톤 이상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타. 국제총톤수 2만5천톤 이상 비전통 추진방식을 가진 크루즈여객선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20의6] <신설 2023. 9. 1.>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계산 대상선박 및 허용값(제30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관련)

1.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계산 대상선박은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 한다.
 - 가. 산적화물선
 - 나. 가스운반선
 - 다. 유조선등
 - 라. 컨테이너선
 - 마. 일반화물선(별표 20의2 제1호마목에 따른 일반화물선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 바. 냉동화물운반선
 - 사. 겸용선
 - 아. 로로화물선(차량운반선)
 - 자. 로로화물선(로로화물수송유니트운반선)
 - 차. 로로여객선
 - 카.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 타. 크루즈여객선

2.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허용값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허용값은 아래 표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기준선값(CIIR)은 선박운항탄소집약도 지표와 함께 사용하는 기준선 관련 지침(G2)에 정의된 2019년 기준값을 말하며, Z는 아래 표 2에 표기된 대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선박 종류별 연간 운항 CII 허용값의 감축 계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말한다.

| |
|--|
| $\text{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허용값(Required CII)} = \left(1 - \frac{Z}{100}\right) \times \text{기준선 값 (CIIR)}$ |
|--|

비고

1.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기준선값 도출 방법

- 가. 2008년 데이터의 제한된 이용가능성으로 CII 기준선 도출은 2019년의 선박 종류별 운항 탄소 집약도 성과를 기준으로 한다.
- 나. 선박 종류별 기준선을 구하는 식은 아래와 같다. 이 경우 CII_{ref} 는 2019년 기준값이고, $Capacity$ 는 표 1에 제시된 선박 종류별 특정 탄소 집약도 지표(CII)에 정의된 것과 동일하며 a 및 c 는 2019년 IMO DCS를 통하여 수집된 개별 선박의 용량과 CII 달성값의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된 매개 변수이다.

$$CII_{ref} = a \cdot Capacity^{-c}$$

2. 선박 종류별 선박운항탄소집약도 기준선

비고 제1호나목의 선박 종류별 기준선을 결정하는 매개변수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2019년 선박 종류별 기준선 결정 매개변수)

| 선종 | | 용량 | a | c |
|-------------------------|---|---------|----------|--------|
| 산적 화물선 | 279,000톤 이상(재화중량톤수) | 279,000 | 4745 | 0.622 |
| | 279,000톤 미만(재화중량톤수) | 재화중량톤수 | 4745 | 0.622 |
| 가스운반선 | 65,000톤 이상(재화중량톤수) | 재화중량톤수 | 14405E7 | 2.071 |
| | 65,000톤 미만(재화중량톤수) | 재화중량톤수 | 8104 | 0.639 |
| 유조선등 | | 재화중량톤수 | 5247 | 0.610 |
| 컨테이너선 | | 재화중량톤수 | 1984 | 0.489 |
| 일반화물선 | 20,000톤 이상(재화중량톤수) | 재화중량톤수 | 31948 | 0.792 |
| | 20,000톤 미만(재화중량톤수) | 재화중량톤수 | 588 | 0.3885 |
| 냉동화물운반선 | | 재화중량톤수 | 4600 | 0.557 |
| 겸용선 | | 재화중량톤수 | 5119 | 0.662 |
| 로로화물선
(차량운반선) | 57,700톤 이상(국제총톤수) | 57,700 | 3627 | 0.590 |
| | 30,000톤 이상, 57,700톤 미만
(국제총톤수) | 국제총톤수 | 3627 | 0.590 |
| | 30,000톤 미만(국제총톤수) | 국제총톤수 | 330 | 0.329 |
| 로로화물선
(로로화물수송유니트운반선) | | 국제총톤수 | 1967 | 0.485 |
| 로로여객선 | 로로여객선 | 국제총톤수 | 2023 | 0.460 |
| | 해상에서의 인명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 제10장에 따른
고속선 | 국제총톤수 | 4196 | 0.460 |
| 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선 | 100,000톤 이상(재화중량톤수) | 재화중량톤수 | 9.827 | 0.000 |
| | 65,000톤 이상, 100,000톤 미만
(재화중량톤수) | 재화중량톤수 | 14479E10 | 2.673 |
| | 65,000톤 미만(재화중량톤수) | 65,000 | 14779E10 | 2.673 |
| 크루즈 여객선 | | 국제총톤수 | 930 | 0.383 |

3. 감축계수(Z)

2019년 기준선 대비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감축계수에 대한 기준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2019년 기준선에 대비 CII 감축 계수(Z%)]

| 년도 | 2019년 대비 감축율 |
|------|--------------|
| 2023 | 5% |
| 2024 | 7% |
| 2025 | 9% |
| 2026 | 11% |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20의7] <신설 2023. 9. 1.>

선박운항탄소집약도 등급체계(제30조의7제2항제1호 및 제2호 관련)

1. 선박운항탄소집약도의 등급

선박운항탄소집약도의 등급은 국제협약 부속서 6 제28규칙이 적용되는 개별 선박에 매년 부여되는 것으로, 해당 선박의 연간 선박운항탄소집약도 지표 달성값이 허용값에서 벗어나는 정도에 따라 A·B·C·D·E의 5등급으로 부여된다.

2. 등급 경계의 결정

가. 각 등급의 경계는 연간 선박운항탄소집약도 허용값(*required CII*)을 기반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결정된다.

$$\left. \begin{aligned} \text{superior boundary} &= \exp(d_1) \cdot \text{required CII} \\ \text{lower boundary} &= \exp(d_2) \cdot \text{required CII} \\ \text{upper boundary} &= \exp(d_3) \cdot \text{required CII} \\ \text{inferior boundary} &= \exp(d_4) \cdot \text{required CII} \end{aligned} \right\}$$

나. 선박 종류별로 등급의 경계를 결정할 때 지수 변환 후 추정된 *dd* 벡터는 아래 표와 같다.

<선박 종류별 등급 경계 결정을 위한 *dd* 벡터>

| 선박의 종류 | | 용량 | <i>dd</i> 벡터(지수변환 후) | | | |
|------------------------|----------------------|--------|----------------------|---------|---------|---------|
| | | | exp(d1) | exp(d2) | exp(d3) | exp(d4) |
| 산적화물선 | | 재화중량톤수 | 0.86 | 0.94 | 1.06 | 1.18 |
| 가스운반선 | 6만5천톤 이상
(재화중량톤수) | 재화중량톤수 | 0.81 | 0.91 | 1.12 | 1.44 |
| | 6만5천톤 미만
(재화중량톤수) | 재화중량톤수 | 0.85 | 0.95 | 1.06 | 1.26 |
| 유조선등 | | 재화중량톤수 | 0.82 | 0.93 | 1.08 | 1.28 |
| 컨테이너선 | | 재화중량톤수 | 0.83 | 0.94 | 1.07 | 1.19 |
| 일반화물선 | | 재화중량톤수 | 0.83 | 0.94 | 1.06 | 1.19 |
| 냉동화물운반선 | | 재화중량톤수 | 0.78 | 0.91 | 1.07 | 1.20 |
| 겸용선 | | 재화중량톤수 | 0.87 | 0.96 | 1.06 | 1.14 |
| 액화천연
가스(LNG)
운반선 | 10만톤 이상
(재화중량톤수) | 재화중량톤수 | 0.89 | 0.98 | 1.06 | 1.13 |
| | 10만톤 미만
(재화중량톤수) | | 0.78 | 0.92 | 1.10 | 1.37 |

| | | | | | |
|-------------------------|-------|------|------|------|------|
| 로로화물선(차량운반선) | 국제총톤수 | 0.86 | 0.94 | 1.06 | 1.16 |
| 로로화물선
(로로화물수송유니트운반선) | 국제총톤수 | 0.76 | 0.89 | 1.01 | 1.27 |
| 로로여객선 | 국제총톤수 | 0.76 | 0.92 | 1.14 | 1.30 |
| 크루즈 여객선 | 국제총톤수 | 0.87 | 0.95 | 1.06 | 1.16 |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21]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 제거업체의 지정기준(제31조 관련)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제거하고자 하는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회수설비 및 수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프레온계 오존층파괴물질을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

가. 회수설비

- 1) 회수설비는 회수설비의 각 연결부, 필요한 정비절차, 부품의 교체 및 수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작동지침서가 제공된 것일 것
- 2) 회수장치에 필터나 건조기가 포함된 경우 그 교체시기가 표시되는 것일 것 (재생장치가 포함된 것으로 한정한다)
- 3) 비응축물질이 자동적으로 제거되는 것이거나 제거절차에 관한 지침이 제공된 것일 것(재생장치가 포함된 것으로 한정한다)
- 4) 비응축물질의 제거, 오일배출 및 오존층파괴물질에 포함된 불순물의 제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존층파괴물질의 총 손실이 회수설비가 처리할 수 있는 오존층파괴물질 총량의 3% 미만일 것
- 5) 2종류 이상의 오존층파괴물질을 회수하는 회수설비의 경우에는 15분 이내에 회수설비 내부에 남아 있는 오존층파괴물질을 제거할 수 있을 것
- 6) 다음 사항이 회수설비 외부의 눈에 띄는 곳에 표시되어 있을 것
 - 가) 제조자명
 - 나) 회수설비의 형식(회수용 또는 회수·재생용)
 - 다) 회수 가능한 오존층파괴물질
 - 라) 회수 속도
 - 마) 최종 회수 부압
 - 바) 회수작업이 완료된 경우 회수설비에 남아 있는 오존층파괴물질의 양

나. 수용시설

회수된 오존층파괴물질이 누설되지 아니하게 저장할 수 있는 회수용기(회수설비에 내장된 회수용기를 포함한다)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할론계 오존층파괴물질을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

제1호의 “프레온계 오존층파괴물질을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와 같다.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21의2] <개정 2025. 8. 12.>

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적용시기 및 적용방법(제32조제2항 및

제3항제2호 관련)

1.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역을 제외한 해역에서 항해하는 선박
 - 가. 2000년 1월 1일 이후 2011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에 설치된 디젤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5 질소산화물배출기준의 기준 1(이하 "기준 1"이라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나. 2011년 1월 1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에 설치된 디젤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5 질소산화물배출기준의 기준 2(이하 "기준 2"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다.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으로서 제6조제2호의2에 따른 북아메리카 해역 및 제6조제2호의3에 따른 캐리비안 해역에서 운항하는 선박과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으로서 제6조제1호에 따른 발틱해역 및 제6조제2호에 따른 북해해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설치된 디젤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5 질소산화물배출기준의 기준 3(이하 "기준 3"이라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에만 종사하는 길이 (「선박법 시행규칙」 제11조1항제9호에 따른 선박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 24미터 미만 선박에 설치된 디젤기관
 - 2) 선박의 설계나 구조의 제약으로 인하여 기준 3을 만족할 수 없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선박에 설치되는 합계출력 750킬로와트 미만의 디젤기관
 - 3) 2021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총톤수 500톤 미만 선박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에만 종사하는 길이 24미터 이상 선박에 설치된 디젤기관
 - 라. 1990년 1월 1일 이후 2000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에 설치된 출력이 5,000kW[6802PS]을 초과하고 실린더 당 용적이 90L 이상인 디젤기관 중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디젤기관은 기준 1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해사기구의 회람문서 등을 참조하여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디젤기관과 이들 디젤기관에 대한 증명된 승인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 마. 교체하거나 추가로 설치(증기시스템을 대체하는 선박용 디젤기관의 설치는 교체로 본다)하는 디젤기관(동일한 형식 및 출력의 디젤기관으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되거나 추가로 설치될 당시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교체되는 디젤기관이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지침에 따라 기준 3을 만족할 수 없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 2를 만족하는 디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작동하도록 개조된 디젤기관 및 연속최대출력이 100분의 10 넘게 증가하도록 개조된 디젤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1) 2000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 기준 1
- 2) 2000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선박: 건조될 당시의 배출허용기준

사. 삭제 <2023. 9. 1.>

2.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역 안에서만 항해하는 선박

가. 2006년 6월 29일 이후 2013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에 설치된 출력 294kW[400PS] 이상의 디젤기관은 기준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2011년 7월 1일 이후 2013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에 설치된 출력 130kW[176PS] 초과 출력 294kW[400PS] 미만의 디젤기관은 기준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2013년 1월 1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에 설치된 디젤기관은 기준 2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라. 삭제 <2019. 9. 11.>

마. 교체하거나 추가로 설치(중기시스템을 대체하는 선박용 디젤기관의 설치는 교체로 본다)하는 디젤기관(동일한 형식 및 출력의 디젤기관으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되거나 추가로 설치될 당시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2013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에 2013년 1월 1일 전에 제작된 디젤기관으로 해양수산부령 제444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의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교체한 경우에는 기준 1을 적용할 수 있다.

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작동하도록 개조된 디젤기관 및 연속최대출력이 100분의 10 넘게 증가하도록 개조된 디젤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1) 출력 294kW[400PS] 이상
 - (1) 2006년 6월 29일 전에 건조된 선박: 기준 1
 - (2) 2006년 6월 29일 이후 건조된 선박: 건조될 당시의 배출허용기준
- 2) 출력 130kW[176PS] 초과 출력 294kW[400PS] 미만
 - (1) 2011년 7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 기준 1
 - (2) 2011년 7월 1일 이후 건조된 선박: 건조될 당시의 배출허용기준

사.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법제처 373 국가법령정보센터

준설선에 2019년 9월 5일 전에 설치된 디젤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디젤기관은 이 규칙에 따른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아.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9월 5일 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설치된 디젤기관은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1) 2007년 11월 4일 전에 건조된 선박으로서 추진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하고 평수(平水)구역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등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라 선박검사의 적용이 제외되는 선박
- 2) 2007년 11월 4일 전에 건조된 항만건설작업선(사목에 따른 준설선은 제외한다)으로서 종전의 「선박안전법 시행령」(2018년 9월 4일 대통령령 제2913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선박검사의 적용이 제외되었던 선박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외국에서 수입되는 선박에 설치된 디젤기관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1) 2025년 1월 1일 이후 2030년 1월 1일 전에 수입되는 선박에 설치된 디젤기관은 기준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젤기관은 기준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에 설치된 디젤기관

나) 2013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에 2013년 1월 1일 이후 교체되거나 추가로 설치된 디젤기관(동일한 형식 및 출력의 디젤기관으로 교체한 경우 또는 2013년 1월 1일 전에 제작된 디젤기관으로 해양수산부령 제444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의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교체한 경우는 제외한다)

- 2) 2030년 1월 1일 이후에 수입되는 선박에 설치된 디젤기관은 기준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21의3] <신설 2023. 9. 1.>

사용 중인 연료유의 견본채취 장소 및 견본채취의 기준(제34조제5항 관련)

1. 일반기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4조제6항에 따라 연료유의 황함유량 점검을 위하여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소유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사용 중인 연료유의 견본을 채취해야 한다.

2. 세부기준

가. 선박의 소유자는 제1호에 따라 연료유 견본채취 장소의 위치 및 개수를 지정할 때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1)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 2) 기관에 사용되는 다양한 연료유 등급을 고려할 것
- 3) 사용 중인 연료유 공급탱크의 하부에 위치할 것
- 4) 연료유의 종류, 유속, 온도 및 압력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안전하게 채취가 가능해야 하며, 가능한 한 연료유 소모 기관 근처에 설치할 것
- 5) 육안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하며 배관도 또는 기타 관련문서에 표시될 것
- 6) 가열된 표면 또는 전기장비로 부터 차폐된 위치에 있어야 하며, 차폐장치 또는 구조는 연료유 공급관의 설계압력하의 누설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충분히 견고할 것
- 7) 채취지점에는 드레인탱크 또는 안전한 위치로 연료유를 유도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나.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실시하는 소속 공무원(이하 이 표에서 “출입검사자”라 한다)은 사용 중인 연료유의 견본을 연료순환시스템이 안정된 상태에서 채취해야 하고, 채취한 지점은 채취 전 연료유로 완전히 세척해야 하며, 해당 견본은 보관용기에 채취하되 사용 중인 연료를 대표해야 한다.

다. 나목에 따른 보관용기는 해당 선박의 대표자 참관하에 밀봉해야 하며, 다음의 정보가 포함된 인식표를 해당 보관용기에 안전하게 부착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선박의 소유자로 하여금 출입검사자가 채취한 연료유 견본과 동일한 견본을 보관하게 할 수 있다.

- 1) 연료유 견본을 채취한 위치
- 2) 연료유 견본을 채취한 날짜 및 항구명
- 3) 선박의 선명 및 IMO 번호
- 4) 밀봉상태 상세

5) 출입검사자 및 해당 선박 대표자의 성명 및 서명

라. 법 제44조제6항에 따라 연료유의 황함유량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점검할 때에는 국제협약 부속서 6의 부록 6에 따른 측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22] <개정 2025. 8. 12.>

연료유공급서의 양식(제35조제4항 관련)

1. 저인화점 연료 및 가스 연료가 아닌 경우

- 가. 연료유를 공급받는 선박의 IMO 번호 및 선명
- 나. 항구명
- 다. 일자, 선박급유업자의 상호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라. 연료유 제품명
- 마. 연료유의 양(m^3)
- 바. 섭씨 15도에서 연료유의 비중(kg/m^3)(연료유는 ISO3675 또는 ISO12185에 따라 시험될 것)
- 사. 황함유량(연료유는 ISO8754에 따라 시험될 것)
- 아. 제공된 연료유가 국제협약 부속서 6 제18.3규칙의 규정에 적합하고 제공된 연료유의 황함유량이 다음의 제한 값을 초과하지 않음을 선박급유업자 대표가 서명하고 증명하는 서류(선박급유업자 대표는 해당되는 아래 네모 빈칸에 X 표로 표기하여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 ☐ 국제협약 부속서 6 제14.1규칙의 제한 값
 - ☐ 국제협약 부속서 6 제14.4규칙의 제한 값
 - ☐ 구매자가 주문한 제한 값 _____% m/m (연료유 구매자의 다음 주문에 따라 선박급유업자 대표가 작성)
 - .1 부속서 6 제4규칙에 따른 동등물과 혼합하여 사용되는 연료 또는,
 - .2 부속서 6 제3.2규칙에 따라 황산화물 배출 감소와 규제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면제증서 발급)
- 자. 제공된 연료유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1 국제기구가 허용가능한 표준(ISO 2719)에 따라 지정된 인화점(섭씨)이 측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2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에서 측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저인화점 연료 또는 가스 연료인 경우

- 가. 연료유를 공급받는 선박의 IMO 번호 및 선명
- 나. 항구명

- 다. 일자, 선박급유업자의 상호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라. 연료유 제품명
- 마. 연료유의 양(m^3)
- 바. 제공된 연료의 종류에 적합한 시험 방법으로 측정된 비중과 이를 측정한 온도
- 사. 제공된 연료유가 국제협약 부속서 6 제18.3규칙의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선박급유업자 대표의 서명이 포함된 서류
- 아. 제공된 연료유 종류에 적합한 시험 방법으로 측정된 황함유량 또는 연료를
공급하는 항만당국과 합의된 시험방법에 따라 측정된 황함유량이 0.001% m/m
미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23] <개정 2020. 11. 19.>

연료유 견본의 관리 및 증명 절차(제35조제4항 관련)

1. 최초 견본을 추출하는 방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실시하고 견본 추출장치의 사용은 제조자의 안내서 또는 지침에 따라야 한다.
 - 가. 수동조작밸브를 갖춘 연속 견본 추출장치(manual valve-setting continuous-drip sampler)
 - 나. 시간 비례의 자동 견본 추출장치(time-proportional automatic sampler)
 - 다. 유량 비례의 자동 견본 추출장치(flow-proportional automatic sampler)
2. 견본채취 및 견본보존

연료유를 수급받는 전 과정에 걸쳐 견본 추출장치를 밀봉할 장치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가. 견본 추출장치의 설치 형태
 - 나. 최초 견본용기(primary sample container) 형식
 - 다. 견본 추출장치 및 최초 견본용기의 사용 전 청결 및 건조 상태
 - 라. 최초 견본용기로 연료유를 추출 관리하는 방법
 - 마. 연료유 수급 중에 견본이 오손되거나 개봉 흔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 이 경우 최초 견본 수납용기(primary sample receiving container)는 견본 추출 장치에 직접 장착된 것이어야 하고, 연료유 수급의 전 과정에 걸쳐 견본이 오염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밀봉하여야 한다.
3. 연료유 견본추출 위치

연료유 견본추출은 선박의 연료유 수급 매니폴드 위치에서 하여야 하고, 연료유 수급 전과정에서 연속적으로 추출한 것이어야 한다.
4. 연료유 견본 관리
 - 가. 견본 보관용기(retained sample container)는 청결하고 건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나. 연료유 견본은 견본 보관용기에 연료유를 완전히 채우기 전에 흔들어서 균질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연료유 견본은 시험용으로 충분한 양(최소 400㎖ 이상이어야 한다)으로 하고, 용기 안의 주입량은 90% ± 5%까지 채우고 밀봉하여야 한다.
5. 연료유 견본의 봉인

연료유 견본은 수집한 즉시 견본의 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대표자가 참여하는 상태에서 입회하에 연료유 공급 대표자가 밀봉하여야 하고, 다음 각 목의 정보를 포함한 인식표를 견본 보관용기에 안전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연료유공급서에도 기록할 수 있다.

- 가. 연료유 견본을 채취한 위치와 방법
- 나. 연료유 공급개시 일자
- 다. 연료유를 공급한 선명 또는 연료유를 공급한 시설명
- 라. 연료유를 공급 받은 선박의 선명 및 IMO 번호
- 마. 연료유 공급 대표자와 본선 대표자의 성명 및 서명
- 바. 밀봉 상태의 상세
- 사. 연료유 등급

6. 연료유 견본 보관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연료유 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 가. 채취된 연료유 견본은 거주구역 외의 장소로서 견본으로부터의 증발가스가 선박안의 인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견본 저장장소에 들어갈 때의 주의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 나. 연료유 견본의 보관 장소는 온도가 상승하지 아니하도록 냉각 또는 대기온도로 유지되고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아니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다.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이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이 법 제45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선박에 연료유 견본을 보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주된 사무실에 보관할 수 있다.

7. 연료유 견본의 황합유량 증명 절차: 선박에 공급된 연료유가 법 제44조에 따른 황합유량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증명할 때에는 국제협약 부속서 6의 부록 6에 따른 절차에 따라야 한다.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24]

선박의 항해 중에 발생하는 물질의 선박 안에서
소각방법(제36조제2항 관련)

1. 선내소각기는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유지하도록 작동하여야 한다.
 - 가. 출구의 연소가스의 온도 범위: 850℃(일반형 선내소각기는 900℃) 이상 1200℃ 미만
 - 나. 배출가스의 산소 함유량: 6% 이상 12% 미만
 - 다. 연소가스의 일산화탄소의 최대 평균치: 200 mg/MJ
 - 라. 수트번호 최대평균: Bacharach 3 또는 Ringelman 1(20% 불투명도) (시동할 때와 동등한 매우 짧은 기간 동안에 한하여 더 높은 수트번호 허용이 가능하다)
 - 마. 소각재 잔류물 속에 타지 아니하는 성분: 무게기준으로 최대 10%
2. 선내소각기는 작동방법에 대한 훈련을 받은 자가 작동하여야 하고, 소각기의 작동지침서에 따라 소각하여야 한다.
3. 연소출구의 감시는 소각 중에 계속하여야 하고, 최소 허용온도인 850℃ 미만 일 때에는 소각물질의 투입을 중지하여야 한다.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25]

유증기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제37조제1항 관련)

| 연번 | 제품 및 물질명 | | 액체화학품분류번호 |
|----|----------|-----------|------------|
| 1 | 휘발유 | Gasoline | 86290-81-5 |
| 2 | 나프타 | Naphtha | 8030-30-6 |
| 3 | 원유 | Crude Oil | 8002-5-9 |

비고

액체화학품분류번호(CAS No.: Chemical Abstracts Service Registry Numbers)는 미국화학회(ACS: American Chemical Society)에서 동질성(同質性)을 가지는 물질 등에 부여한 고유번호를 말한다.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26] <개정 2021. 6. 30.>

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안전기준(제37조제3항 관련)

1. 정의

- 가. “최대허용 이송율(Maximum allowable transfer rate)”이란 유조선에 화물이나 선박평형수를 적재할 수 있는 최대 체적비를 말하며, 시간당 용적을 그 단위로 한다.
- 나. “최대 유증기 이송율(Maximum vapor processing rate)”이란 터미널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처리설비가 이송할 수 있는 최대 능력을 말한다.
- 다. “유조선 유증기 연결구(Tanker Vapour Connection)”란 유조선의 고정식 유증기수집 장치에서 유증기 수집 호스(Hose) 또는 암(Arm)에 연결하는 지점을 말한다.
- 라. “터미널 유증기 연결구(Terminal Vapour Connection)”란 터미널 측의 고정식 수집 장치에서 유증기수집 호스(Hose) 또는 암(Arm)에 연결하는 지점을 말한다.
- 마. “유증기 평형(Vapour Balancing)”이란 화물의 유입으로 인하여 급유되는 유조선의 화물창으로부터 화물을 배출하는 시설의 탱크로 유증기수집 장치를 통하여 치환된 유증기의 이송을 말한다.
- 바. “유증기 수집장치(Vapour Collection System)”란 탱커의 화물창에서 방출된 유증기를 모아 유증기처리장치(vapour processing unit)로 유증기를 이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관 및 호스 등을 말한다.
- 사. “유증기 파괴장치(Vapour Destruction Unit)”란 소각기와 동등한 수단으로 화물 유증기를 파괴하는 유증기 처리 장치를 말한다.
- 아. “유증기 분산장치(Vapour Dispersion Unit)”란 화물을 적하하거나 선박평형수를 주입 또는 배출하는 동안 유조선에 위치하지 아니한 벤트장치를 통하여 대기로 화물 유증기를 방출하는 유증기 처리장치를 말한다.
- 자. “유증기배출 제어장치(Vapour Emission Control System)”란 유조선으로부터 수집된 유증기를 제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관 및 호스 등을 말하며, 유증기 수집 장치 및 유증기 처리장치를 포함한다.
- 차. “유증기 처리장치(Vapour Processing Unit)”란 유조선으로부터 수집된 유증기를 회수, 파괴, 분산하는 유증기제어장치의 구성품을 말한다.
- 카. “유증기 회수장치(Vapour Recovery Unit)”란 흡수, 흡착, 응축, 필터링기술 또는 이와 동등한 기술로서 비파괴적인 방법으로 화물유증기를 회수하는 유증기처리장치를 말한다.
- 타. “액 녹아웃 용기(Liquid knockout vessel)”란 유증기로부터 액을 분리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파. “휘발성 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이하 VOCs라 한다)”이란 대기 중에서 질소산화물(NOx)과 결합하여 오존과 동등한 광화학 산화체를 형성하여 지구상의 식물, 인체에 대한 질병 등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을 생성하는 것을 말한다.

2. 적용제외범위

이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휘발성유기화합물 재액화설비를 갖춘 경우
- 나. 예기치 못한 계통의 중대한 손상의 경우
- 다. 정기적인 검사를 위하여 일시적인 개방 등이 필요한 경우

3. 대체설비의 요건

이 기준과 다르게 유증기배출제어장치를 설계·배치하려는 자는 대체 설계와 배치에 대한 평가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평가서에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전체 계통도에 대한 설명
- 나. 화재 및 폭발 가능성에 대한 식별
- 다. 선박 또는 터미널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기술적 근거
- 라. 대체설계가 안전 성능기준을 만족함을 나타내는 기술적 근거
- 마. 그 밖에 설계적으로 동등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

4. 시스템의 개요

가. 일반사항

선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대기 중으로 방출하지 아니하고 육상으로 보내기 위하여 관장치 및 제어장치가 필요하며, 이러한 설비는 화물유관과는 별도로 유증기관장치와 산소농도계측 감시장치(불활성가스 발생장치가 설치된 선박만 해당한다), 압력감시장치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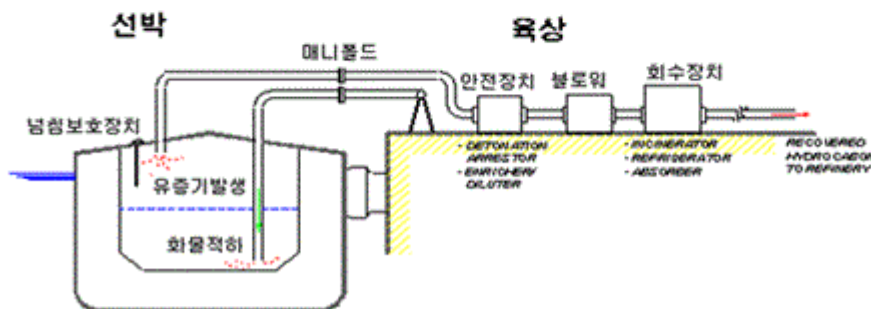


그림 1 유증기회수장치(VRU, Vapour Recovery System)설비의 개념도

나. 선박의 유증기관 연결구

- 1) 수동 조작이 가능한 격리밸브를 유조선 유증기 연결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밸브의 조작 장소는 시각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2) 유증기 수집관 또는 유증기 수집호스의 끝단은 잘못 연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 3) 유증기 매니폴드를 터미널 측의 액체 적하관(Liquid Loading Line)에 잘못 연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선박의 유증기 연결 플랜지는 선박의 크기에 관계 없이 국제석유회사해사평의회(OCIMF)의 매니폴드 기준을 적용할 것이 권고된다.
- 4) 유증기 수집 호스는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전기적으로 연속성이 있어야 하며, 플랜지에 적용하는 산업규격에 따라 여분의 구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5) 유증기관 연결구 끝단 1m는 붉은색/노란색/붉은색으로 색칠되어야 하며, 붉은색 띠는 100mm, 노란색 띠는 800mm, 50mm 크기의 검은색 글씨로 “유증기(VAPOUR)”의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하고 유증기관 연결구 플랜지의 상부에 지름 12.7mm, 길이 25.4mm의 스타드(stud)가 부착되어야 하며, 스타드는 플랜지의 상부 중간 볼트의 구멍 사이에 부착되어야 한다. 다만,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영문표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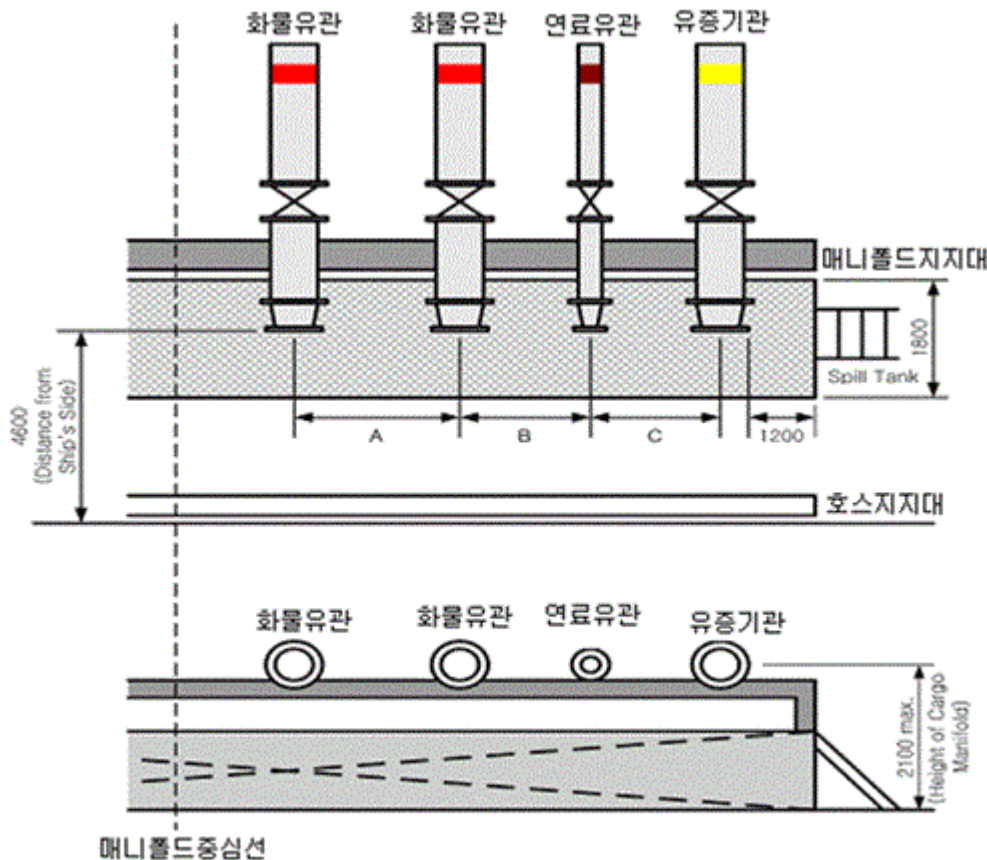


그림 2 표준매니폴드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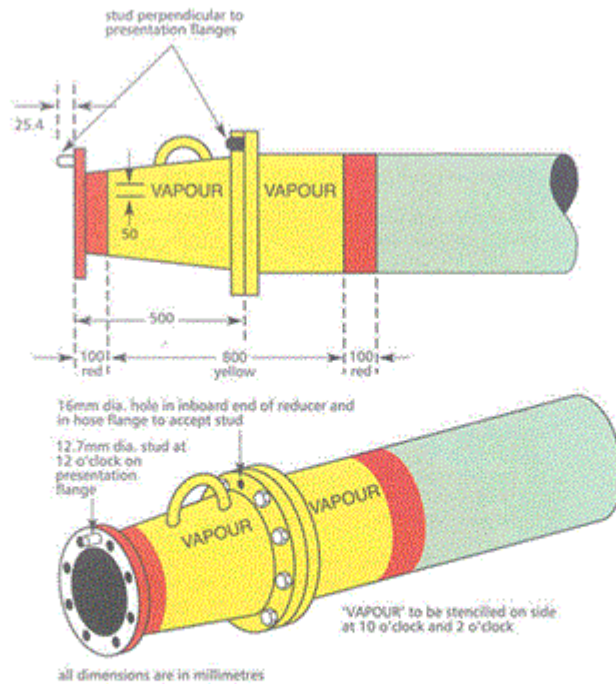


그림 3 화물유증기 매니폴드의 식별

5. 휘발성유기화합물 처리설비의 설계요건

가. 일반사항

1) 일반요건

- 가) 처리용량은 이 표에 따른 최대용량의 한 개의 시스템보다는 50% 용량을 2조로 구성하도록 권고한다.
- 나) 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설계와 설치에 유조선의 넘침 위험, 과·부압 위험 및 발화위험 등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제거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위험한 상황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경고 및 자동제어 계통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조작자의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작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 다) 터미널에서는 이송능력 전역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유조선의 화물유증기 발생율을 연속적으로 안전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라) 상호 반응하는 두 가지 종류 이상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관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마) 데토네이션 어레스터, 플레임 어레스터 또는 플레임 스크린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또는 국제해사기구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 바) 폭발을 피하기 위하여 불활성가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국제해사기구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사) 유증기 관장치는 전기적으로 연속성이 있어야 하며, 필요한 곳에 접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아) 생성중합체를 발생할 수 있는 유증기를 운송하는 관장치는 가열장치 또는 이를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설계기준

가) 설계압력은 관내 유체의 최고사용압력으로서 다음의 압력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1) 압력도출밸브 또는 이에 대신하는 과압방지장치가 붙어있는 관장치에 있어서는 해당 도출밸브 또는 과압방지장치의 조정압력과 동등한 압력

(2) 압축기 토출측 관에 있어서는 정격회전 시 토출측 밸브를 완전히 폐쇄하였을 때의 토출압력

(3) 감압밸브가 장비된 관의 저압측에 있어서 도출밸브가 붙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압측의 설계압력과 동등한 압력

나) 설계온도는 관내 유체의 최고사용온도로 한다. 다만, 상온보다 낮은 온도의 관장치에 있어서는 관내 유체의 최저사용온도로 한다.

3) 설계요건

가) 시스템 안에 사용되는 압력계, 유량계, 그 밖의 중요한 지시장치는 현장에서 및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경보장치는 가시광의 경보를 사용하여야 하며, 경보음은 유사한 장치와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각각 다른 음 또는 형식을 가져야 한다.

다) 표면온도는 177℃를 넘어서는 아니 되며, 표면온도가 177℃를 넘는 표면은 단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관장치의 설계요건

1) 일반사항

가) 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관 및 관장치는 강 또는 동등 이상의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유증기 수집장치에 사용되는 관 및 관 부착품은 최대 허용압력이 15K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탄소강관 및 저합금강 사용제한

가) RST 338 및 RST 342는 설계온도가 450℃를, RST 349는 425℃를 초과하는 관에 사용할 수 없다.

나) RST 412는 설계온도가 500℃를, RST 422, RST 423 및 RST 424는 550℃를 초과하는 관에 사용할 수 없다.

다) 배관용탄소강관(KSD 3507, SPP)은 설계압력이 1MPa 이하로서 설계온도가 230℃ 이하인 관 장치에만 사용할 수 있다.

3) 관의 계산상의 최소두께

가) 내압을 받는 곧은 관의 계산상 최소두께 (t) 는 다음 식에 따른다.

$$t = (t_0 + c) \frac{100}{100 - a} \text{ (mm)}$$

t : 강도두께

c : 부식예비두께

a : 마이너스제작공차(%)

나) 관을 굽힘 가공할 경우에는 가공 전의 관의 계산상 최소두께 (t_b)는 다음 식에 따른다.

$$t_b = (t_0 + c + b) \frac{100}{100 - a} \text{ (mm)}$$

b : 굽힘가공 예비두께(mm)로서 (라)의 규정에 따른다.

t_0 , c 및 a : 전호에 따른다.

다) 관의 강도두께 (t_0) 는 다음 식에 따른다.

$$t_0 = \frac{PD}{2fJ + P} \text{ (mm)}$$

P : 설계압력 (MPa)

D : 관의 바깥지름 (mm)

f : 허용응력 (N/mm^2)으로서 마)의 규정에 따른다.

J : 이음효율로서 다음에 따른다.

(1) 이음매 없는 관: 1.00

(2) 전기저항용접관: 0.85(다만, 이음매 없는 관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1.00으로 한다.)

(3) 그 밖의 용접관 및 단접관은 그때마다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굽힘가공 예비두께(b) 는 다음식에 따른 것 이상이어야 한다. 가공 후 관의 굽힘가공 부분의 최소두께는 곧은 관의 계산상 최소두께 (t)보다 작지 아니하여야 한다.

$$b = \frac{1}{2.5} \times \frac{D}{R} t_0 \text{ (mm)}$$

D : 관의 바깥지름(mm)

R : 중심선의 곡률반지름(mm). 다만, $R \geq 2D$ 이어야 한다.

t_0 : 강도두께(mm)로서 (다)호의 규정에 따른다.

마) 탄소강관 또는 합금강관의 허용응력 f 는 원칙적으로 다음 값 중 최소의 것으로 한다.

$$f = \frac{E_T}{1.6}, \quad f = \frac{R_{20}}{2.7}, \quad f = \frac{f_R}{1.6}$$

E_T : 설계온도에 있어서 규격최소항복강도 또는 0.2% 의 내력(N/mm^2)

R_{20} : 상온에 있어서 규격최소인장강도(N/mm^2)

f_R : 설계온도에 있어서 10만 시간 후의 평균 파단강도(N/mm^2)

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발생량

1) 발생량의 계산

가) 유증기의 발생량예측 계산은 시간의 함수로 표시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생가스의 유동율

(2) 발생가스의 온도

(3) 발생가스의 성질·상태, 즉 C1, C2, C3, iC4, nC4, iC5, nC5, C6, C7 등

(4) VOC, 메탄, 불활성가스의 혼합비율 등

나) 발생가스는 탱크에서 생성되어 관장치를 거쳐 처리설비로 유도되는 과정에서 유체의 이동에 따라 탱크에서 생성되는 양의 예측과 함께 시스템 각 부분의 온도 예측이 가능하여야 하며 특히, 선박의 적양하 조건을 고려하여 계산되고 조절되어야 한다.

다) 선박의 적양하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발생량은(유기화합물의 경우)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E_{voc} = \frac{0.1203 \times (S \times P \times M \times Q)}{T}$$

E_{voc} : 연간 휘발성유기화합물 총발생량(kg/year)

0.1203: 상수($kg\text{-mole} \times K/kPa \times 103l$)

S: 포화계수(무차원, 비산적하시 1.0 및 액면하적하시 0.2)

P: 온도 T에서 화물의 증기압(kPa)

M: 유증기분자량($kg/kg\text{-mole}$)

Q: 적재화물의 체적($1000l/year$)

T: 온도(K)

라) 적하조건, 화물유의 성질·상태 및 온도, 적하율, 선박의 형상 등이 발생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모든 가능한 계산에 따라 발생률을 예측하여야 하며 검사 신청시에 이러한 계산의 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유증기 관련 관장치의 압력손실 계산

1) 압력손실은 화물유증기-공기혼합물(Cargo Vapor-Air Mixture)의 밀도(Density) 산정을 통하여 계산한다.

2) 압력손실 계산식

가) 압력손실 계산식은 다음의 식과 같다.

$$\Delta P = \left(f \frac{L}{D} + K \right) \frac{\rho V^2}{2}$$

ΔP : 압력손실(Pressure Drop) Pa

f : 마찰손실계수(Friction Loss Coefficient)

L : 파이프길이 (Length of Pipe) m

D : 파이프안지름(Inner Diameter of Pipe) m

K : 관장치 손실계수(Loss Coefficient of Pipe Fittings)

ρ : 밀도(Density, kg/m^3)

V : 평균속도(Mean Velocity) m/s

나) 가)의 식에서 마찰손실계수 (f) 는 다음과 같다.

$$\frac{1}{\sqrt{f}} = 0.86 \ln \left(\frac{\varepsilon/D}{3.7} + \frac{2.51}{\text{Re}\sqrt{f}} \right)$$

f : 마찰손실계수

Re : 레이놀즈 수(Reynolds number) $\left(\frac{vD}{\nu} \right)$

ε : 관의 표면거칠기

D : 관의 안지름

ν : 유체의 동점성계수(Kinematic Viscosity)

다) 가)의 식에서 관장치 손실계수 K 는 아래의 표와 같다.

| 구분 | K | 구분 | K |
|--|------|------------------------------|------|
| 90° 벤드 | 0.32 | 디퓨저(Diffuser) | 0.58 |
| 티(Tee)  | 1.40 | 리듀서(Reducer) | 0.35 |
| 티(Tee)  | 0.38 | 버터플라이밸브
(Butterfly valve) | 0.9 |
| 티(Tee)  | 0.33 | 프레임어레스터
(Frame arrester) | 3.0 |

라) 나)의 식에서 마찰손실계수 (f)는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0.02를 사용할 수 있다.

마. 터미널 유증기관 연결구

1) 선박의 과부압을 방지하기 위한 터미널 유증기 연결구의 요건

가) 원격 조작되는 화물유증기관 차단밸브는 다음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 (1) 가능한 한 터미널 유증기 연결구에 가깝게 설치될 것
- (2) 수동조작이 가능할 것

- (3) 개폐지시기가 설치된 것일 것
- (4) 비상차단 신호가 울린 후 30초 이내에 차단될 것
- (5) 제어신호를 상실한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차단되도록 유압 또는 공압의 비상차단 설비를 갖추고, 이 경우에도 30초 이내에 차단될 것
- (6) 작동 중에 경보를 발할 것

나) 터미널 유증기 연결구는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별이 가능하여야 하며 연결 플랜지는 유조선 유증기 연결구에 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유증기를 이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호스는 다음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 (1) 최대허용압력은 0.5kg/cm^2 이상일 것
- (2) 최대허용압력의 4배의 파열압력에 견딜 것
- (3) -0.2kg/cm^2 의 부압에 변형이 없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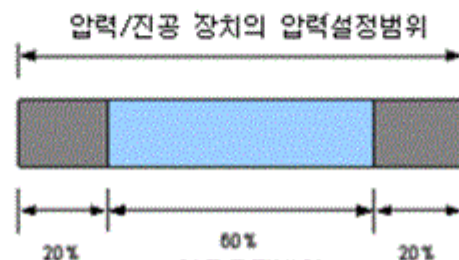
라) 터미널의 유증기관에는 터미널 연결구에 근접하여 압력계측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압력계측 설비는 적하 전에 작동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조작자에게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를 발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비상차단 밸브의 동작과 연동되어야 하며, 화물펌프 정지 등의 작동에 대하여 선박의 화물 이송에 관한 책임자와 터미널 책임자간의 상호 동의가 있어야 한다.

마) 육상처리설비의 오작동으로 유조선이 과압 상태로 되지 아니하도록 역류방지설비 또는 과압 보호장치 등과 동등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터미널 유증기수집장치의 요건

가) 처리용량은 최대화물 적하율의 1.25배 이상이어야 하며, 선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활성가스의 공급률, 가스프리 등의 용량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적하시 선박의 화물창에서 발생하는 유증기의 발생률은 25% 이상이어야 한다.

나) 장치의 용량은 선박의 경우 화물창의 과부압 방지장치의 설정압력에서 20%의 여유를 두고 유지될 수 있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선박의 설계압력을 초과하거나 부압이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



천 4 허용운전범위

다) 육상의 유증기수집관에 연결된 압력은 선박으로부터 접속부에 이르는 관의 압력강하 등을 고려하여 보정되어야 한다.

라) 터미널 유증기관의 압력계측 위치는 선박의 유증기관, 연결호스 등의 압력강하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마) 압력지시장치를 유증기 수집관장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 압축기, 송풍기 등이 유조선으로부터 유증기를 이송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에는 부압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장치와 안전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감시장치는 설정된 압력에 도달하면 경보를 발하고 압축기 또는 송풍기의 이송율이 조정되어야 하고, 허용한계에 도달한 경우의 비상정지기능이 있어야 한다.

바. 화재 또는 폭발로부터의 보호

1) 불활성화된 화물창으로부터 유증기를 받아 유증기회수장치로 처리하는 한 개의 연결구만을 갖는 유증기 배출 제어장치는 선박으로부터 유증기를 회수하기 전에 유증기 수집관을 불활성 가스로 충전하여야 하며 적어도 한 개의 연속적으로 계측이 가능한 산소농도 계측기를 터미널 유증기 연결구로부터 6m 이내에 설치하거나 동등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불활성화된 화물창으로부터 유증기를 받아 유증기파기장치로 처리하는 한 개의 연결구만을 갖는 유증기 배출 제어장치는 터미널 유증기 연결구로부터 총 배관길이 18m 이내에 데토네이션 어레스터를 설치하거나 계통을 불활성화하여야 한다.

3) 불활성화되지 아니한 화물창으로부터 유증기를 받아 유증기 회수장치 또는 유증기 파기장치로 처리하는 한 개의 연결구만을 갖는 유증기 배출 제어장치는 터미널 유증기 연결구로부터 총 배관길이 18m 이내에 데토네이션 어레스터를 설치하거나 계통이 폭발범위에서 벗어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유증기제어장치의 가스농도가 허용치에 달한 경우 산소 및 탄화수소 분석 신호에 따라 유증기차단밸브를 자동적으로 폐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거나 동등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선박으로부터 수집된 유증기를 수집장치를 통하여 터미널의 저장탱크에 보내는 증기평형방식의 유증기제어방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가) 각 터미널의 유증기연결구로부터 총 배관길이 18m가 넘지 아니하는 위치에 데토네이션 어레스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각 터미널 저장탱크의 유증기 리턴라인에 가능한 근접하여 데토네이션

어레스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터미널 저장탱크에는 고액면경보장치 및 과적 조절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6) 유증기 파기장치를 제외하고 각 벤트장치의 출구에는 플레임 어레스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유증기압축기 및 블로워

1) 폭발범위안의 유증기를 취급하는 유증기압축기 및 블로워의 입출구에는 다음 중 하나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데토네이션 어레스터

나) 플레임 어레스터

다) 폭발진압설비

2) 유증기수집장치에 왕복동 또는 스크류형식의 압축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를 발하고 지시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각 압축기실의 토출가스 온도의 과도한 상승

나) 냉각수 온도의 과도한 상승

다) 과도한 진동

라) 윤활유 높이(level)의 저하

마) 윤활유 압력의 저하

바) 베어링 온도의 과도한 상승

3) 유증기수집장치에 액체 링형식(liquid ring-type)의 압축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를 발하고 지시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액체밀봉매체의 저유위

나) 액체밀봉매체의 유량저하

다) 액체밀봉매체의 과도한 온도상승

라) 윤활유 높이(level)의 저하

마) 윤활유 압력의 저하

바) 베어링 온도의 과도한 상승

4) 유증기수집장치에 원심식 압축기, 송풍기 또는 로브형 블로워를 사용할 경우에는 불꽃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 액 녹아웃 용기

1) 액 녹아웃 용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용기 안에 액위를 식별하기 위한 설비

나) 고액면 경보장치

다) 비상저위액면에 도달한 경우 유증기 차단밸브, 콤프레서 및 블로워의 정지

자. 유증기회수장치 및 유증기파기장치

1) 폭발범위 안의 유증기를 취급하는 유증기회수장치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데토네이션 어레스터

나) 플레임 어레스터

다) 폭발진압설비

2) 증기파기장치의 입구에는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액체밀봉장치

나) 증기관에 직렬로 설치된 두개의 비상차단 정지밸브

3) 증기파기장치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육상에 접안한 선박으로부터 30m 이상 떨어져 설치될 것

나) 증기관장치에 데토네이션 어레스터 또는 플레임 어레스터를 설치할 것

다) 데토네이션 어레스터 또는 플레임 어레스터가 화염을 감지한 경우 경보와 비상정지가 가능할 것

4) 증기파기장치가 비상정지 또는 실화되었을 경우에는 비상차단밸브가 작동되어야 한다.

차. 전기설비 및 제어설비

1) 터미널의 위험구역

가) 터미널에서는 위험구역을 국제전기기술표준위원회(IEC)의 관련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분류하고 그 위험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방폭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 방폭설비 | Zone |
|---|---|---------|
| Ex d | 내압방폭형[Flameproof (Explosion proof) Enclosure] | 1, 2 |
| Ex e | 안전증가형[Increased Safety] | 1, 2 |
| Ex ia | 본질안전형[Intrinsically Safe] | 0, 1, 2 |
| Ex ib | 본질안전형[Intrinsically Safe] | 1, 2 |
| Ex o | 유입방폭형[Oil Immersion] | 2 |
| Ex p | 압력방폭형[Pressurized Apparatus (Purged Apparatus)] | 1, 2 |
| Ex q | 사입방폭형[Powder Filling (Sand Filling)] | 2 |
| Ex m | 몰딩방폭형[Encapsulation] | 1, 2 |
| Ex n or
Ex N | “N”형방폭형[Non incentive or/and normally no sparking circuits] | 2 |

(1) Zone 0

가스 또는 유증기의 인화성 물질과 공기의 혼합물이 연속적으로 혹은 오랫동안 노출되어 폭발성 분위기를 형성하는 장소

(2) Zone 1

가스 또는 유증기의 인화성 물질과 공기의 혼합물이 통상의 작업 중에 때때로 노출되어 폭발성 분위기를 형성하는 장소

(3) Zone 2

가스 또는 유증기의 인화성 물질과 공기의 혼합물이 통상의 작업중에는 일어나지 아니하나 짧은 시간동안 노출되어 폭발성 분위기를 형성하는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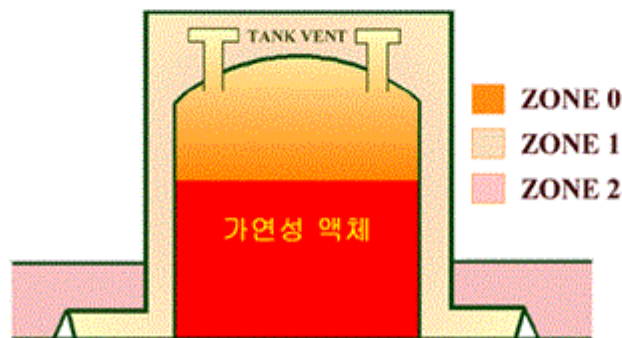


그림 5 위험구역에 대한 개념도

2) 방폭형 전기설비

가) 방폭형 전기기기는 IEC 60079 시리즈 (KS C IEC 60079 시리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규격에 따라야 하며, 이 표의 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나) 방폭구조의 구성재료는 설치장소의 환경조건 및 폭발성가스에 대하여 전기적, 기계적, 열적 및 화학적으로 충분한 저항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다) 휴대형 기구의 용기 및 외부 부품은 마찰에 따른 불꽃발생의 염려가 적은 재료 또는 들 수 있는 끈을 붙인 비금속성인 튼튼한 덮개를 부착한 것이어야 한다.

라) 방폭구조의 중요부에 사용하는 절연컴파운드 및 실링컴파운드는 사용중에 유해한 팽창, 수축, 연화 또는 균열 등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노출충전부에 충전하는 컴파운드는 난연성이어야 한다.

마) 내압 방폭구조, 안전증가 방폭구조 및 내압 방폭구조인 전등기구의 투광체 및 그 밖의 기기의 관찰창에는 원칙적으로 튼튼한 금속제 가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방폭형 전기기기에는 방폭구조의 종류 및 대상가스의 종류를 명백히 표시하여야 하며, 전등기구에는 적합한 전구의 종류 및 와트숫자를 표시하여야 하고, 방폭형 전기기기의 기준주위온도는 50℃로 한다.

3) 제어 및 안전설비

가) 제어 및 안전에 관련된 시스템의 급전회로는 동력회로 및 전등회로와 분리하여야 한다.

나) 제어시스템, 경보시스템 및 안전시스템은 가능한 한 하나의 고장이 다른 고장으로 확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능을 저해하는 범위가 최소한으로 되도록 페일 세이프의 원칙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다) 제어를 유압 또는 공기압으로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한 개의 시스템이 손상된 경우에도 계통에 이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제어 및 안전장치 중 정전 또는 시스템의 결함으로 선박 또는 터미널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비 또는 장치는 비상으로 동작할 수 있는 회로 또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카. 작업절차

1) 화물이송작업

가) 이송작업은 시작 전에 선박의 관계자와 터미널 담당자 간에 협의되어야 하며, 이송작업 중에도 정보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선박과 터미널간의 교신을 위하여 본질안전형의 쌍방향 무선 전화기 2조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 화물이송률은 터미널의 유증기 이송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박과 사전 협의에 따른 이송률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라) 최대이송 허용률은 최대 유증기 이송률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2) 선박으로부터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받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가) 모든 경보장치 및 차단장치의 효력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유증기관과 관련된 선박측 및 터미널측의 모든 관련밸브의 차단 및 작동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다음 사항을 규정된 절차에 따라 확인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가) 계통 안에 사용되는 중요한 분석기는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교정되어야 하며, 국가에서 인정된 교정검사기관의 교정 또는 승인된 스펠가스에 따른 방법에 따라 교정되고 그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나) 유증기 배출제어장치에 대한 기록은 정기적으로 책임자가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작업절차서

- 가) 터미널에는 작업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작업절차, 실무지침 및 참고용 도면이 포함된 작업절차서를 비치하여야 하며, 작업절차서에는 비상상황 시 책임에 대한 규정 및 비상조치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나) 비상조치와 관련된 사항은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식화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작업자의 각 작업위치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27]

방오시스템의 검사방법(제44조제3항 관련)

1. 검사신청서에 명시된 방오시스템이 형식승인을 받았는지 여부와 선박에 적용된 방오시스템이 검사신청서에 명시된 시스템과 동일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구비서류를 검토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작업을 시행한다.
 - 가. 방오시스템 용기에 대한 제품 증명서가 검사신청에서 언급된 시스템과 동일한지 여부의 점검
 - 나. 방오시스템의 샘플링
 - 다. 방오시스템의 시험
 - 라. 현장에서 행하는 그 밖의 점검
3. 방오시스템이 선박에 적용되기 전이나 중간, 또는 완료 후 등 작업의 각 단계에서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검사로 인하여 방오시스템의 보전, 구조 또는 작업에 영향을 끼쳐서는 아니 된다.
4. 현존선의 경우 기존의 방오시스템이 제거되었으면, 상기 점검에 추가하여 방오시스템이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밀봉도장이 적용된 경우에는 선박에 적용된 도료의 이름, 형식 및 색상이 검사신청서에 기재된 것과 일치하고, 기존의 방오시스템이 밀봉도장으로 확실하게 덮어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28]

방오시스템의 기술기준(제44조제3항 관련)

1. 별표 18 제1호나목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선체의 서로 다른 지점에서 최소한 8개의 샘플을 채취하여야 한다.
3. 허용한도는 대표적인 시험조건 하의 표준편차보다 높지 아니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30%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28의2] <개정 2021. 6. 30.>

에너지효율검사 신청 시 구비서류 (제46조의2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선박의 에너지효율 관련 기록부
 - 가. 재화중량톤수(여객선 및 로로여객선의 경우에는 총톤수)
 - 나. 주기관 및 보조기관의 연속최대출력
 - 다. 기준선속(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계산에 사용되는 속력을 말한다)
 - 라. 연료유의 종류
 - 마. 연료소비율(주기관의 경우에는 연속최대출력의 75%,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연속최대출력의 50%에서의 연료소비율을 말한다)
 - 바. 설계시 하기만재출수선 조건으로 추정한 출력선도 또는 실제 해상시운전 조건에서 추정한 출력선도(설계단계에서의 출력선도 추정과정 및 방법론을 포함하여야 한다)
 - 사. 선박명세서
 - 아. 선박의 종류(별표 20의2에서 정의된 선박의 종류 또는 국제해사기구가 정의하는 선박의 종류를 말한다) 및 선박의 종류를 분류하기 위한 관련 정보
 - 자. 선급부호(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 차. 선박 추진장치 및 전기공급장치의 개요
 - 카.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저감장치에 관한 서류(에너지저감장치가 있는 선박만 해당한다)
 - 타.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결과
 - 1) 계산에 사용된 매개변수 및 계산과정
 - 2) 날씨보상계수에 대한 정보(날씨보상계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결과를 추가로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에너지효율검사증서(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선박만 해당한다)
3.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
 - 가. 수조시험설비의 개요(설비명, 수조 및 예인장비 명세서와 모니터링장비의 검교정 기록을 포함한다)
 - 나. 수조시험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선과 실제선박의 선도(모형선과 실선의 유사성을 증명할 수 있는 상세 자료를 말한다)
 - 다. 재화중량톤수의 검증을 위한 선박의 경하중량(사람, 화물 등을 적재하지 않은 선박 자체의 중량) 및 배수량조사표
 - 라. 수조시험의 방법 및 결과에 대한 상세 보고서(실제 해상시운전 조건 및 하기만재출수선 조건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포함한다)
 - 마. 기준선속의 계산 과정에 관한 서류(거칠기 계수, 반류환산계수 등과 같이 경험치를 바탕으로 하는 추정 근거를 포함한다)
 - 바. 수조시험을 생략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적은 서류[동형선(同形船)의 선도와 수조시험 결과, 선박명세서의 비교자료와 수조시험을 생략한 사유에 대한 기술적 정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포함한다]

사. 전력조사표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29] <개정 2021. 12. 23.>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검사 등 준비기준 (제47조제1항 관련)

1. 유증기배출제어장치

가. 설계평가

나. 다음 부품에 대한 검사

- 1) 블로워, 압축기 또는 펌프 및 그 원동기
- 2) 데토네이션 어레스터 및 플레임 어레스터
-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프로세스 용기
 - (가) 동체의 두께가 16mm 이상인 프로세스 용기
 - (나) 설계압력이 1MPa 이상인 프로세스 용기
 - (다) 설계온도가 150℃를 넘는 프로세스 용기
 - (라) 38℃에서의 증기압이 0.2MPa 이상인 물질을 수납하는 내용적이 0.5m³ 이상인 프로세스 용기
- 4) 소각기
- 5) 방폭기기(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기관 또는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승인된 기기는 면제할 수 있다)
-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중요기기로 정하여 고시한 부품

다. 성능검사

- 1) 배출제한에 대한 성능검사
- 2) 각 관장치 및 압력용기의 누설검사
- 3) 안전 및 보호장치의 효력시험 등

2. 기름오염방지설비

| 검사 종류 | 검사 등 준비기준 |
|-------|---|
| 정기검사 | 가. 기름여과장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내용물 및 위험성 가스를 배출할 것 2) 배관·밸브 및 콕(이하 "배관등"이라 한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3) 펌프의 작동부분을 꺼내고 밸브상자를 개방할 것 4) 압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최초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검정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는 생략한다. 5)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 |

| |
|--|
| 6) 부속된 중요한 밸브 및 콕을 개방할 것 |
| 나. 유성찌꺼기저장장치 또는 선저폐수저장장치 |
| 1) 유성찌꺼기탱크 또는 선저폐수탱크의 맨홀을 개방하고 내용물 및 위험성 가스를 배출할 것 |
| 2) 배관 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
| 3)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 |
| 다. 선저폐수농도경보 장치 또는 선저폐수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
| 1) 유분농도계의 시료 채취관을 개방할 것 |
| 2)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 |
| 3) 제조자 또는 제조자가 위임한 자가 발행한 경보장치에 대한 교정 보고서를 준비할 것 |
| 라. 평형수배출관장치 |
| 1) 배관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
| 2)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 |
| 마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또는 기름농도감시장치 |
| 1) 유분농도계의 시료 채취관 및 유량계의 검출기를 개방할 것 |
| 2)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 |
| 바. 혼합물탱크장치 |
| 1) 탱크의 맨홀을 개방하고 내용물 및 위험성가스를 배출할 것 |
| 2) 내부의 적절한 장소에 안전발판을 설치할 것 |
| 3) 배관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
| 4) 유수경계면검출기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 |
| 사. 분리평형수탱크 |
| 1) 분리평형수탱크의 맨홀을 개방하고 내용물 및 위험성가스를 배출할 것 |
| 2) 내부의 적절한 장소에 안전발판을 설치할 것 |
| 3) 배관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
| 4) 압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최초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 5)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 |
| 아. 화물창원유세정설비 |
| 1) 배관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
| 2) 펌프의 작동부분을 꺼내고 밸브상자를 개방할 것 |
| 3) 압력시험 및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 |
| 4) 부속된 중요한 밸브를 개방할 것 |
| 자. 화물창 |

| | |
|-------------------------|--|
| | 1) 화물창의 맨홀을 개방하고 내용물 및 위험성가스를 배출할 것
2) 내부의 적절한 장소에 안전발판을 설치할 것
3) 배관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4) 압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최초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 제1종중간
검사 | 가. 기름여과장치는 정기검사 가목1)·3)·5) 및 6)에 따른 준비를 할 것
나. 유성찌꺼기저장장치 및 선저폐수저장장치는 정기검사 나목1) 및 3)에 따른 준비를 할 것
다. 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 또는 선저폐수용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는 정기검사 다목1), 2) 및 3)에 따른 준비를 할 것
라. 평형수의 배출관장치는 정기검사 라목2)에 따른 준비를 할 것
마.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또는 기름농도감시장치는 정기검사 마목1) 및 2)에 따른 준비를 할 것
바. 혼합물탱크장치는 정기검사 바목1)·2) 및 4)에 따른 준비를 할 것
사. 분리평형수탱크는 정기검사 사목1)·2) 및 5)에 따른 준비를 할 것
아. 화물창원유세정설비는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
자. 화물창은 정기검사 자목1) 및 2)에 따른 준비를 할 것 |
| 제2종중간
검사 | 정기검사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기름오염방지설비에 대한 작동시험과 정기검사 다목3)에 따른 준비를 할 것 |
| 임시검사
및
임시항해
검사 | 정기검사의 준비사항 중 해당 검사와 관련된 사항의 준비를 할 것 |

3.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

| 검사 종류 | 검사 등 준비기준 |
|-------|--|
| 정기검사 | 가. 유해액체물질·선박평형수의 배출관장치
1) 배관 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2)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
나. 예비세정장치
1) 배관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2) 펌프의 작동부분을 꺼내고 밸브상자를 개방할 것 |

| | |
|-------------|--|
| | 3) 부속된 중요밸브를 개방할 것 |
| | 4) 압력시험 및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 |
| | 다. 수면하 배출장치 |
| | 1) 배관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
| | 2) 펌프의 작동부분을 꺼내고 밸브상자를 개방할 것 |
| | 3)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 |
| | 라. 통풍세정장치 |
| | 1) 배관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
| | 2)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 |
| | 마. 스트리핑장치 |
| | 1) 배관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
| | 2) 펌프의 작동부분을 꺼내고 밸브상자를 개방할 것 |
| | 3) 부속된 중요밸브를 개방할 것 |
| | 4) 압력시험 및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 |
| | 바. 희석수주입장치 |
| | 1) 배관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
| | 2) 펌프의 작동부분을 꺼내고 밸브상자를 개방할 것 |
| | 3)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 |
| 제1종중간
검사 | 사. 화물가열장치 |
| | 1) 배관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
| | 2) 압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최초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아. 전용평형수탱크 |
| | 1) 전용평형수탱크의 맨홀 뚜껑을 개방하고 내용물 및 위험성가스를 배출 할 것 |
| | 2) 내부의 적절한 장소에 안전발판을 준비할 것 |
| | 3) 배관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
| | 4) 압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최초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5)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 |
| | 자. 화물창 |
| | 1) 화물창의 맨홀을 개방하고 내용물 및 위험성가스를 배출할 것 |
| | 2) 내부의 적절한 장소에 안전발판을 설치할 것 |
| | 3) 배관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
| | 4) 압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최초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가. 유해액체물질·선박평형수의 배출관 장치는 정기검사 가목2)에 따른 준비를 할 것 |

| | |
|-------------------------|---|
| | <p>나. 예비세정장치는 정기검사 나목1)에 따른 준비를 할 것</p> <p>다. 수면하 배출장치는 정기검사 다목1)에 따른 준비를 할 것</p> <p>라. 통풍세정장치는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p> <p>마. 스트리핑장치는 정기검사 마목1)에 따른 준비 및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p> <p>바. 회석수주입장치는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p> <p>사. 화물가열장치는 정기검사 사목1)에 따른 준비를 할 것</p> <p>아. 전용평형수탱크는 정기검사 아목1) 및 3)에 따른 준비를 할 것</p> <p>자. 화물창은 정기검사 자목1) 및 2)에 따른 준비를 할 것</p> |
| 제2종중간
검사 | <p>가. 예비세정장치는 배관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p> <p>나. 스트리핑장치는 배관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p> <p>다. 회석수주입 장치는 작동시험 준비를 할 것</p> <p>라. 화물가열장치는 배관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p> <p>마. 전용평형수탱크는 정기검사 아목1) 및 3)에 따른 준비를 할 것</p> |
| 임시검사
및
임시향해
검사 | 정기검사의 준비사항 중 해당 검사와 관련된 사항의 준비를 할 것 |

4. 분뇨오염방지설비

| 검사 종류 | 검사 등 준비기준 |
|-------|--|
| 정기검사 | <p>가. 분뇨처리장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 탱크의 맨홀을 개방하고 내용물을 제거할 것 2) 부속펌프의 주요작동부분을 분해하고 밸브를 개방할 것 3)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 <p>나. 분뇨마쇄소독장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순환수탱크 및 보조탱크의 상태점검창을 통해 내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것 2) 삭제 <2021. 12. 23.> 3) 필터와 마쇄장치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4) 조립후 압력시험 의 준비를 할 것(최초로 검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5)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 6) 처리약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준비 할 것 <p>다. 분뇨저장장치</p> |

| | |
|-------------------------|---|
| | 1) 저장탱크의 맨홀 을 개방하고 내용물을 제거할 것
2)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 |
| 제1종중간
검사 | 가. 분뇨처리장치는 정기검사 가목1)부터 3)까지에 따른 준비를 할 것
나. 분뇨마쇄소독장치는 정기검사 나목1)부터 3)까지 및 5)에 따른 준비를 할 것
다. 분뇨저장장치는 정기검사 다목에 따른 준비를 할 것 |
| 제2종중간
검사 | 가. 분뇨저장장치는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
나. 분뇨마쇄소독장치는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
다. 분뇨처리장치는 작동시험 준비를 할 것 |
| 임시검사
및
임시항해
검사 | 정기검사의 준비사항 중 해당 검사와 관련된 사항의 준비를 할 것 |

5. 대기오염방지설비

| 검사 종류 | 검사 등 준비기준 |
|-------|---|
| 정기검사 | 가. 오존층파괴물질(총톤수 400톤 미만인 선박은 제외한다)
1) 할론이 포함된 소화장치의 누설시험을 준비할 것
2) 염화불화탄소(CFCs) 또는 염화불화탄화수소(HCFCs)가 포함된 장치의 누설시험을 준비할 것
나.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배출방지설비
1) 각 디젤기관 별로 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 질소산화물배출관련 기록부 및 기관변수 기록부를 비치할 것. 이 경우 기관변수 기록부에는 구성부품의 교환 및 조정이 있는 경우 기록·유지되어 있어야 한다.
2) 선상기관변수점검방식을 채택한 경우 각 디젤기관별 한 개의 실린더 개방 또는 예비품을 준비할 것. 다만, 국내항해에 종사는 선박으로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제9항 및 「어선법 시행규칙」 제56조제6항에 따라 개방검사준비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검사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3) 선상단순측정방법을 채택한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시험을 준비할 것
4)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설치한 경우 케미컬저장탱크를 개방할 것
5)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 건설기계검사증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의 건설기계 원동기배 |

| | |
|-------------|---|
| | <p>출가스 인증서(해당되는 선박에 한정한다)를 갖추어 둘 것</p> <p>다. 연료유</p> <p>연료유공급서 및 연료유 견본을 준비할 것</p> <p>라. 유증기수집제어장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증기수집제어장치의 승인된 도면을 준비할 것 2) 유증기수집제어장치의 관장치, 산소농도계측감시장치, 압력감시장치의 작동시험을 준비할 것 <p>마. 선내소각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각기 검정합격증명서와 폐기물기록부를 준비할 것 2) 내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소제할 것 3) 작동시험 준비를 할 것 <p>바.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설치된 경우에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케미컬저장탱크를 개방할 것 2)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 기술 매뉴얼을 비치할 것 3)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 기록부를 비치할 것 |
| 제1종중간
검사 | <p>가. 각종 설비의 작동시험 준비를 할 것</p> <p>나. 오존층파괴물질(총톤수 400톤 미만인 선박은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할론이 포함된 소화장치의 누설시험을 준비할 것 2) 염화불화탄소 또는 염화불화탄화수소가 포함된 장치의 누설시험을 준비할 것 <p>다.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배출방지설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 디젤기관별로 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 질소산화물배출관련 기록부 및 기관변수기록부를 비치할 것. 이 경우 기관변수 기록부에는 구성부품의 교환 및 조정이 있는 경우 기록·유지되어 있어야 한다. 2) 선상기관변수점검방식을 채택한 경우 각 디젤기관별 한 개의 실린더 개방 또는 예비품을 준비할 것. 다만, 국내항해에 종사는 선박으로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제9항 및 「어선법 시행규칙」 제56조제6항에 따라 개방검사준비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검사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3) 선상단순측정방법을 채택한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시험을 준비할 것 4) 정기검사 나목5)의 준비를 할 것 <p>라. 연료유</p> <p>연료유공급서 및 연료유 견본을 준비할 것</p> |

| | |
|-------------------------|--|
| | <p>마.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설치된 경우에 한정한다)</p> <p>1) 케미컬저장탱크를 개방할 것</p> <p>2)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 기술 매뉴얼을 비치할 것</p> <p>3)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 기록부를 비치할 것</p> |
| 제2종중간
검사 | <p>가. 각종 설비의 작동시험 준비를 할 것.</p> <p>나. 해당되는 경우 정기검사 나목1) 및 나목5)의 준비를 할 것</p> |
| 임시검사
및
임시항해
검사 | 정기검사의 준비사항 중 해당 검사와 관련된 사항의 준비를 할 것 |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30] <개정 2021. 6. 30.>

선박의 자재·약제 비치기준

(제53조제2항 관련)

| 구분 | 종류 | 비치량 |
|---|-----------------------|----------------------------------|
| 1. 총톤수 1만톤 이상의 유조선 |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 B형 또는 C형 | 선박길이의 1.5배 또는 200m 중 큰 쪽의 길이 |
| | 유처리제·유흡착재 또는 유겔화제 | 다음의 산식에 의한 양
$40X+100Y+30Z=U$ |
| 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연해구역안에서만 운항하는 총톤수 1만톤 미만 1천톤 이상의 유조선 |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 B형 또는 C형 | 선박길이의 2배 또는 150m 중 큰 쪽의 길이 |
| | 유처리제·유흡착재 또는 유겔화제 | 다음의 산식에 의한 양
$20X+50Y+15Z=U$ |
| 3.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근해구역 또는 원양구역을 운항하는 총톤수 1만톤 미만 1천톤 이상의 유조선 |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 B형 또는 C형 | 선박길이의 1.5배 또는 100m 중 큰 쪽의 길이 |
| | 유처리제·유흡착재 또는 유겔화제 | 다음의 산식에 의한 양
$40X+100Y+30Z=U$ |
| 4.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연해구역안에서만 운항하는 총톤수 1천톤 미만 100톤 이상의 유조선 |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 A형 또는 B형 | 선박길이의 2배 또는 100m 중 큰 쪽의 길이 |
| | 유처리제·유흡착재 또는 유겔화제 | 다음의 산식에 의한 양
$20X+50Y+15Z=U$ |
| 5.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근해구역 또는 원양구역을 운항하는 총톤수 1천톤 미만 100톤 이상의 유조선 |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 A형 또는 B형 | 선박길이의 1.5배 또는 60m 중 큰 쪽의 길이 |
| | 유처리제·유흡착재 또는 유겔화제 | 다음의 산식에 의한 양
$40X+100Y+15Z=U$ |
| 6. 추진기관이 설치된 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유조선은 제외한다) |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 B형 또는 C형 | 선박길이의 1.5배의 길이 |
| | 유처리제·유흡착재 또는 유겔화제 | 다음의 산식에 의한 양 |

| | | |
|--|--------|------------------------|
| | 는 유겔화제 | $40X + 100Y + 30Z = W$ |
|--|--------|------------------------|

비고

1.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유형 | 수면위(cm) | 수면아래(cm) |
|----|-------------|-------------|
| A형 | 2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40 미만 |
| B형 | 30 이상 60 미만 | 40 이상 90 미만 |
| C형 | 60 이상 | 90 이상 |

2. X, Y, Z, U 및 W는 각각 다음과 같다.

X: 유처리제의 양(kℓ)

Y: 유흡착재의 양(t)

Z: 유겔화제의 양[액상(kℓ), 분말(t)]

U: 해당 선박의 총톤수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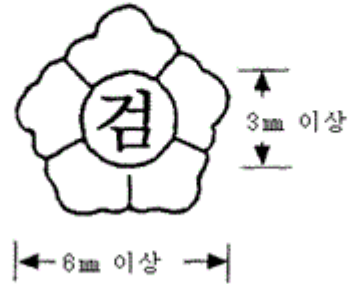
| 총톤수 | 100 이
상
200 미
만 | 200 이
상
500 미
만 | 500 이
상
1천 미
만 | 1천 이
상
5천 미
만 | 5천 이
상
1만 미
만 | 1만 이
상
5만 미
만 | 5만 이상
10만 미
만 | 10만 이
상 |
|-----|--------------------------|--------------------------|-------------------------|------------------------|------------------------|------------------------|---------------------|------------|
| U | 10 | 15 | 20 | 30 | 70 | 100 | 230 | 320 |

W: 해당 선박의 총톤수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값

| 총톤수 | 1만 이상
2만 미만 | 2만 이상
5만 미만 | 5만 이상
10만 미만 | 10만 이상
20만 미만 | 20만 이상 |
|-----|----------------|----------------|-----------------|------------------|--------|
| W | 30 | 45 | 60 | 80 | 100 |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31]

해양오염방지설비의 검인표시(제58조제3항 관련)



비고

위의 검인표시 외에 검정일자와 검정기관의 약호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32] <개정 2024. 6. 25.>

형식승인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60조제1항 관련)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
| | | 1차 | 2차 | 3차 |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 법 제110조 제9항제1호 | 형식승인 취소 | | |
| 2. 검정을 받지 않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10조 제9항제2호 | 업무정지 6개월 | 형식승인 취소 | |
| 3.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10조 제9항제2호의2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형식승인 취소 |
| 4. 기준에 미달하는 형식승인대 상설비를 판매한 때 | 법 제110조 제9항제3호 | 업무정지 6개월 | 형식승인 취소 | |
| 5.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때 | 법 제110조 제9항제4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형식승인 취소 |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32의2] 삭제 <2018. 5. 1.>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33] <개정 2013.3.24>

대행자의 지정요건 및 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62조제1항 관련)

1. 대행자의 지정기준

가. 일반적 요건

- 1)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 검사경험, 능력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
- 2)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설계·구조·설비 및 안전관리체제에 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것

나. 구체적 기준

- 1)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설계·구조·증명서·공학시스템에 관한 규정집 및 관련 규정을 최신화하기 위한 연구조직을 보유하고 있을 것
- 2) 연구조직은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
 - 가) 관련 규정을 개발하고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자, 관리자 및 지원 인력을 보유할 것
 - 나) 대행업무를 용이하게 집행할 수 있는 지방조직을 갖출 것
- 3) 검사원의 검사서비스의 집행 및 비밀 준수 책임에 관한 윤리강령을 갖추고 있을 것
- 4) 검사 신청 시 검사를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것
- 5)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
- 6) 검사품질에 관한 정책 및 목표를 정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모든 구성원이 숙지하고 있을 것
- 7) ISO9000시리즈 이상의 내부품질관리체제를 갖추고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을 것
 - 가) 조직 자체의 규정은 체계적으로 제정되어 관리 및 유지될 것
 - 나) 법 제112조에 따른 협정을 준수할 것
 - 다) 검사품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선박검사원의 책임, 권한 및 검사원과의 관계는 명확하게 규정되고 문서화되어 있을 것
 - 라) 모든 검사는 통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질 것
 - 마) 조직이 수행하는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것
 - 바) 검사원의 자격과 지식을 계속적으로 최신화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것
 - 사) 품질기준이 잘 유지되고 품질관리체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기록이 잘 유지될 것

아) 품질관리에 관하여 계획되고 문서화된 종합적인 내부감사활동이 시행되고 있을 것

8)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독립적인 감사기관의 감사를 받아 품질관리제도의 확인을 받을 것

2. 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가. 대행자 지정요건의 준수 및 유지 여부

나.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정한 이행 여부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34]

업무대행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63조제1항 관련)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 2차 |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대행의 협정이 체결되거나 지정된 때 | 법 제113조 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 2. 법 제112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때(업무대행의 지정의 경우로 한정한다) | 법 제113조 제1항제2호 | 경고 | 지정취소 |
| 3.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 법 제113조 제1항제3호 | 경고 | 지정취소 |
| 4.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체결된 협정에 위반한 때 | 법 제113조 제1항제4호 | 경고 | 지정취소 |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35] <개정 2019. 2. 13.>

수수료(제68조제1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서류에 대한 검인·변경검인: 3천원

- 가.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 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 다.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
- 라.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

2.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검사 등

| | | | | | | | | |
|---------|----------------------|----------|-------|-------------|--------------|---------------|---------------|--------|
| 정기검사 | 가. 유조선 및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 | 배의 길이(m) | 45 미만 | 45 이상 70 미만 | 70 이상 100 미만 | 100 이상 140 미만 | 140 이상 180 미만 | 180 이상 |
| | | 금액(원) | 2만1천 | 3만4천 | 4만2천 | 4만9천 | 6만4천 | 7만7천 |
| | 나. 그 밖의 선박 | 총톤수(t) | 1만 미만 | | | 1만 이상 | | |
| | | 금액(원) | 1만5천 | | | 1만9천 | | |
| 제1종중간검사 | 가. 유조선 및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 | 배의 길이(m) | 45 미만 | 45 이상 70 미만 | 70 이상 100 미만 | 100 이상 140 미만 | 140 이상 180 미만 | 180 이상 |
| | | 금액(원) | 1만3천 | 2만1천 | 2만8천 | 3만4천 | 4만5천 | 5만6천 |
| | 나. 그 밖의 선박 | 총톤수(t) | 1만 미만 | | | 1만 이상 | | |
| | | 금액(원) | 1만2천 | | | 1만3천 | | |
| 제2종 | 가. 유조선 및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 | 배의 길이(m) | 45 미만 | 45 이상 70 미만 | 70 이상 100 미만 | 100 이상 140 미만 | 140 이상 180 미만 | 180 이상 |
| | | 금액(원) | 463 | 463 | 463 | 463 | 463 | 463 |

| | | | | |
|--|------------------|-----------|--------------|--|
| | | | 1회마다
5천 | |
| | 나. 그
밖의
선박 | 금액
(원) | 출입검사 1회마다 7천 | |

비고

가. 출입검사의 횟수는 선박검사관 한명이 하루 4시간을 넘지 아니하는 출입검사시간을 1회로 하고, 출입검사시간이 하루 4시간을 넘는 때에는 4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다.

나. 임시검사의 수수료가 이 표에 정한 해당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정기검사 수수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정기검사의 수수료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 삭제 <2014.12.29.>

라. 삭제 <2014.12.29.>

마. 삭제 <2014.12.29.>

3.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 3천원

4.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성능시험·검정

(단위: 원/1대)

| 설비의 종류 | 성능시험 | 검정 |
|------------------------|-------|----------------|
| 기름여과장치 | 10만3천 | 4,500 |
|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 10만3천 | 4,500 |
| 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 | 15만5천 | 7천 |
| 유분농도계 | 17만 | 10천 |
| 유량계·선속계 | 8만3천 | 4천 |
|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의 감시기
록장치 | 13만5천 | 6천 |
| 유수경계면검출기 법제처 | 9만3천 | 465 4,500 |

| 출력(PS) (kW) | NOx 실측을 하는
경우(표본기관) | NOx 실측을 하지 않는
경우(소속기관) |
|-------------------|------------------------|---------------------------|
| 500PS(367kW) 이하 | 3만6천 | 1만 |
| 1,000PS(735kW) 이하 | 3만6천 | 2만1천 |
| 1,000PS(735kW) 초과 | 3만6천 | 3만6천 |

나.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 (단위: 원/1대)

| 단일 제작용인 경우 | 동일 배기가스 유량을 가진 연속
생산품으로 인정 받은 경우 |
|------------|-------------------------------------|
| 3만6천 | 2만3천4백 |

비고

가. 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 및 황산화물 배출적합증서 발급수수료는 검사수수료와 별도로 3천원을 납부해야 한다.

나.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은 동일 기관 측정 시 1주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기 당 해당 표본기관 수수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6. 방오시스템검사

| 검사 종류 | 총톤수
1만톤 미만 | 총톤수
1만톤 이상 |
|-----------|----------------|----------------|
| 방오시스템검사 | 1만원 | 2만원 |
| 임시방오시스템검사 | 출입검사 1회 마다 5천원 | 출입검사 1회 마다 8천원 |

비고

가. 검사수수료와 별개로 방오시스템검사증서 발급 수수료 367원을 해양수

| 검사사항 |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검
증을 포함하는 경우 |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검증에 포함하
지 않는 경우 |
|-------|------------------------------|---------------------------------|
| 검사수수료 | 3만6천 | 8천원 |

비고

검사수수료와 별도로 에너지효율검사증서 발급 수수료 3천원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9. 2. 13.>

| 배출물 표 | | | | | | | | | |
|---|--|--|--|--|--|--|--|--|--|
| 배출물
DISCHARGE RATE (m ³ /h) | | | | | | | | | |
| 선박의
속력
Speed
(kt)
선박의
흘수
Draft
(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 상지(80g/m²)]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9. 8.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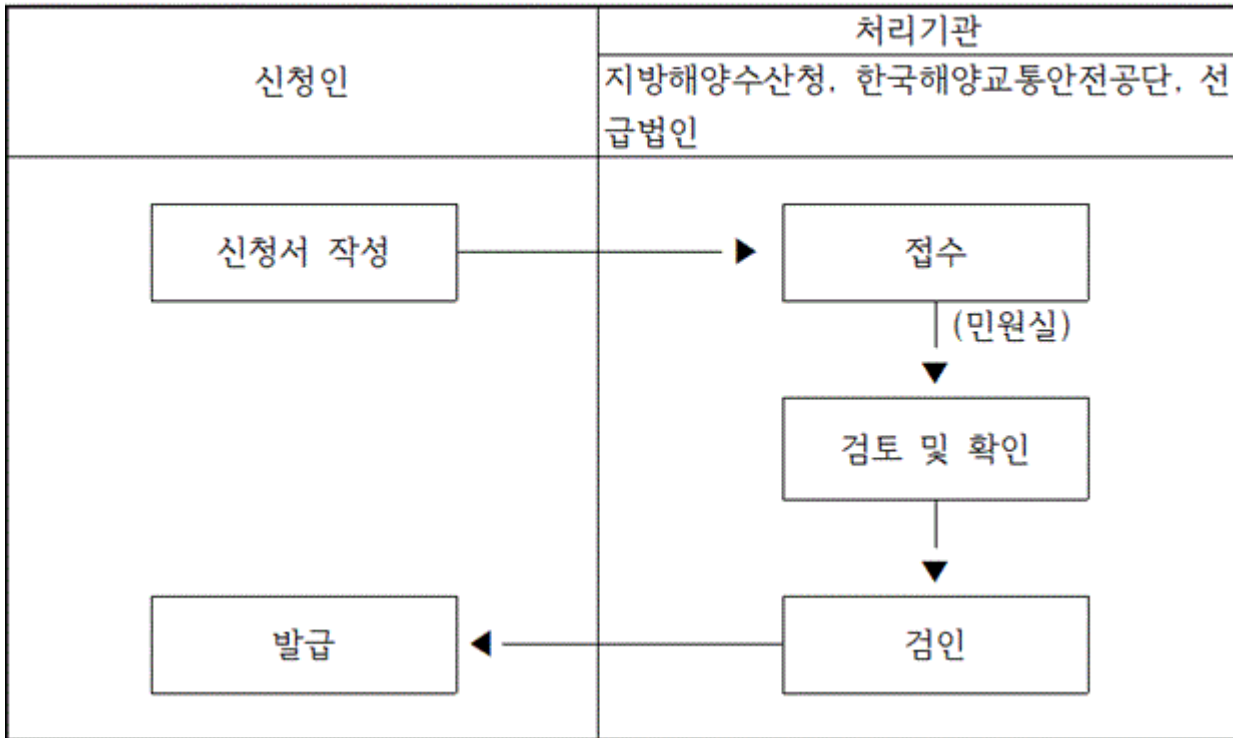
(앞쪽)

| | | | | |
|---|---|--|-------------------|------------|
| 유해액체물질 배출지침서 검인신청서 | | | |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 | 성명
(상호명)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소 | (전화:) | | |
| 선박 | 선명 | | 선박번호 | |
| | 선적항 | | 총톤수 | |
| | IMO 번호 | | | |
| <p>「해양환경관리법」 제27조제3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의 검인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p> <p>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p> <p>선급법인의 장 귀하</p> | | | | |
|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아래의 사항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p> | | | | |
| 구비서류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확인사항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서류 사본 제출) | 수수료 | |
| | 1.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1부
2.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및 선급법인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선박에 실을 수 있는 유해액체물질의 목록 1부 | 선박검사증서(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3,000원 | |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폐기물기록부 (RECORD OF GARBAGE DISCHARGES)

제 1 부 (Part 1)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제5장 제1.2규칙에 정의된 화물잔류물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
[For all garbage other than cargo residues as defined in regulation 1.2(Definitions)
of MARPOL ANNEX V]

선 명: _____
(Ship's name)

선박번호 또는 호출부호: _____
(Distinctive No. or letters)

국제해사기구(IMO) 번호: _____
(IMO No.)

폐기물의 범주:
(Garbage categories)

- A. 플라스틱류
(Plastics)
- B. 음식 쓰레기
(Food wastes)
- C. 생활 쓰레기(예를 들어, 종이제품, 걸레, 유리, 금속, 병, 도자기 등)
[Domestic Wastes(e.g. paper products, rags, glass, metal, bottles, crockery, etc)]
- D. 식용유
(Cooking Oil)
- E. 소각재
(Incinerator ashes)
- F. 운항상 쓰레기
(Operational wastes)
- G. 동물 사체
(Animal Carcasses)
- H. 어구
(Fishing Gear)
- I. 전자 폐기물
(E-Waste)

(5쪽 중 제2쪽)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제5장 제4규칙(특별해역 외에서 폐기물의 배출) 및 제5규칙(고정식 또는 부유식 플랫폼으로부터의 폐기물 배출에 관한 특별요건) 또는 제6규칙(특별해역 내에서 폐기물의 배출) 또는 극지운항선박규칙 11-A편 제5장에 따른 배출

[Discharges under MARPOL Annex V regulations 4(Discharge of garbage outside special areas), 5(Special requirements for discharge of garbage from fixed or floating platforms) or 6(Discharge of garbage within special areas) or chapter 5 of part 11-A of the Polar Code]

| 일/시
(Date/
Time) | 선박의 위치(위도/경도), 다른 선박으로 배출시 해당 다른 선박의 명칭, 육상으로 배출 시 항구의 위치
[Position of the ship(latitude/longitude) or port if discharged ashore or name of ship if discharged to another ship] | 범주
(Category) | 배출량
(Estimated amount discharged) | | 소각량(m³)
[Estimated amount incinerated (m³)] | 비고:(소각기 시작/정지 시간 및 위치 등 일반 참고사항)
[Remarks:(e.g. start/stop time and position of incineration; general remarks)] | 확인/서명
(Certification/Signature) |
|------------------------|--|------------------|--------------------------------------|--|--|--|------------------------------------|
| | | | 해양에 배출
(m³)
[Into sea(m³)] | 수용시설 또는 다른 선박으로 배출(m³)
[To reception facilities or to ship(m³)]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쪽 중 제3쪽)

| 제7규칙에 따른 예외적인 또는 사고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
[Exceptional discharge or loss of garbage under regulation 7(Exceptions)] | | | | | |
|--|--|------------------|--|--|--|
| 일/시
(Date/
Time) | 항구 또는 선박의
위치
(위도/경도 및 수
심)
[Port or
position of the
ship(latitude/
longitude and
water depth if
known)] | 범주
(Category) | 유실량 또는
배출량(㎥)
[Estimated
amount lost
or discharged
(㎥)] | 배출 또는 유실 사유 및 일반 참고사항
(우발적인 유실을 방지하거나 최소로 하기
위한 합리적인 모든 조치)
[Remarks on the reason for the discharge
or loss and general remarks(e.g.
reasonable precautions taken to prevent
or minimize such discharge or accidental
loss and general remarks)] | 확인/서명
(Certification
/Signatur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장의 서명:
(Master's signature)

날짜:
(Date)

제 2 부 (Part II)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제5장 제1.2규칙에 정의된 모든 화물잔류물

[For all cargo residues as defined in regulation 1.2(Definitions) of MARPOL ANNEX V]

선 명:

(Ship's name)

선박번호 또는 호출부호:

(Distinctive No. or letters)

국제해사기구(IMO) 번호:

(IMO No.)

폐기물의 범주:

(Garbage categories)

J. 해양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화물잔류물

[Cargo residues (non-HME)]

K. 해양환경에 유해한 화물잔류물

[Cargo residues (HME)]

(5쪽 중 제5쪽)

| 제4규칙(특별해역 외에서 폐기물의 배출) 및
제6규칙(특별해역 내에서 폐기물의 배출)에 따른 배출
[Discharges under regulations 4 (Discharge of garbage outside special areas) and
6(Discharge of garbage within special areas)] | | | | | | |
|--|--|------------------|---|--|---|--|
| 일/시
(Date/
Time) | 선박위치(위도/
경도) 또는 육
상배출시 항만
위치)
[Position the
ship(latitude/
longitude) or
port if
disposed of
ashore]] | 범주
(Category) | 배출량
(Estimated Amount
discharged) | | 해상에 배출 시 배출 시작
/종료 시점의
선박 위치
(Start and stop
positions of the ship
for discharges into the
sea) | 확인/서명
(Certification
/Signature) |
| | | | 해상에 배출
(m³)
[Into sea
(m³)] | 수용시설 또는
타 선박으로
배출(m³)
[To reception
facilities or
to another
ship(m³)]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장의 서명: _____
 (Master's signature)

날짜: _____
 (Date)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1.12.23>

(제1쪽)

기름기록부
OIL RECORD BOOK

기관구역에서의 작업
Machinery space operations

(모든 선박)
(All ships)

선명:

Name of ship

선박번호 또는 신호부자: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총톤수:

Gross tonnage

기간: 부터 까지

Period: from _____ to _____

210mm × 297mm [인쇄용지(특) 100g/m²]

(제2쪽)

| 일자
Date | 부호(문자)
Code(letter) | 항목(번호)
Item(number) | 작업기록 및 작업책임자의 서명
Record of Operations/Signature of Officer in Charg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름오염방지관리인의 서명:
 Signature of officer in charge of the prevention of oil pollution
 (기름오염방지관리인이 선임된 선박만 해당한다)
 (Applicable only to the ship for which the above officer is designated)

선장의 서명:
 Signature of Master

(제3쪽)

비고

1. 다음 표에 기재된 작업을 행한 경우에 그 일자와 해당 작업의 내용을 표시하는 부호 및 번호를 기록하고 필요한 상세사항을 작업기록 및 해당 작업책임자의 서명란에 적을 것

Whenever any of the operation described in the table below take place in the ship, the date, operational code and item number shall be inserted in the appropriate columns and the required particular shall be recorded chronologically in the column of Record of operations/signature of officer in charge.

2. 기름기록부는 한글로 기록하여야 하며 IOPP증서를 소지하는 선박은 영어로 기록하거나 병기할 것

The entries in the Oil Record Book shall be in Korean, and, for ships holding an IOPP Certificate, in English in parallel with Korean or in English only.

기록하여야 할 작업의 내용과 그 부호 및 항목

Contents of Work, Code and Item to be Recorded

| 부 호
Code | 항 목
Item | 기록할 사항의 목록
List of Items to be Recorded |
|-------------|-------------|---|
| (A) | | 연료유탱크에 평형수의 적재 또는 연료유탱크의 세정
Ballasting or cleaning of oil fuel tanks |
| | 1 | 평형수를 적재한 탱크의 식별기호
Identity of tank(s) ballasted. |
| | 2 | 최후로 기름을 적재한 후 세정하였는가? 세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탱크에 적재되어 있던 기름의 종류
Whether cleaned since they last contained oil and, if not, type of oil previously carried. |
| | 3 | 세정절차
Cleaning process |
| | .1 | 세정을 시작하고 완료한 시각과 선박의 위치
position of ship and time at the start and completion of cleaning |
| | .2 | 한가지 또는 다른 방법이 채택된 탱크의 식별기호(헹구어내기, 스팀분사, 화학 약품으로 세정 : 사용된 화학약품의 형식 및 양, m ³)
identify tank(s) in which one or another method has been employed(rinsing through, steaming, cleaning with chemicals: type and quantity of chemicals used, in m ³) |
| | .3 | 세정수가 이송된 탱크의 식별기호 및 양 m ³
identity of tank(s) into which cleaning water was transferred, and the quantity in m ³ . |
| | 4 | 평형수 적재
Ballasting |
| | .1 | 평형수 적재를 시작하고 완료한 당시의 시각과 선박의 위치
position of ship and time at start and end of ballasting |
| | .2 | 탱크가 세정되지 않는 경우 평형수의 양(m ³)
quantity of ballast if tanks are not cleaned, in m ³ |
| (B) | | 위 (A)에 언급된 연료유탱크로부터 선박평형수 또는 세정수의 배출
Discharge of dirty ballast or cleaning water from oil fuel tanks referred to under section(A) |

(제4쪽)

| | | |
|-----|----|--|
| (C) | 5 | 탱크의 식별기호
Identity of tank(s) |
| | 6 | 배출을 시작한 당시의 선박의 위치
Position of ship at start of discharge |
| | 7 | 배출을 종료한 당시의 선박의 위치
Position of ship on completion of discharge |
| | 8 | 배출중의 선박의 속력
Ship's speed(s) during discharge |
| | 9 | 배출방법
Method of discharge |
| | .1 | 15 ppm 장치를 통한 배출
through 15 ppm equipment |
| | .2 | 수용시설에의 배출
to reception facilities |
| | 10 | 배출한 양(m³)
Quantity discharged, in m³ |
| | | 유성찌꺼기(슬러지 및 그 밖의 유성잔류물)의 저장, 이송 및 처분
Collection, transfer and disposal of oil residues(sludge) |
| | 11 | 유성찌꺼기의 저장
선내에 저장된 유성찌꺼기의 양. 그 양은 주 단위로 기록되어야 한다. ^{주1)} (이는 항해가 일주일 넘게 지속된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한번은 기록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Quantities of oil residues (sludge) retained on board. The quantity should be recorded weekly ¹⁾ : (This means that the quantity must be recorded once a week even if the voyage lasts more than one week) |
| | .1 | - 탱크의 식별기호
- identity of tank(s) |
| | .2 | - 탱크의 용량(m³)
- capacity of tank(s)(m³) |
| | .3 | - 총 저장량(m³)
- total quantity of retention(m³) |
| | .4 | - 수동 작업으로 저장한 잔류물의 양(m³)
(조작자가 유성찌꺼기를 유성찌꺼기 저장탱크로 이송하는 수동조작 저장을 개시하였음)
- quantity of residue collected by manual operation(m³)
(Operator initiated manual collections where oil residue (sludge) is transferred into the oil residue (sludge) holding tank(s)) |
| | 12 | 유성찌꺼기의 처분방법
Methods of disposal of oil residues (sludge) |

(제5쪽)

| | | |
|-----|----|---|
| | | 이송되거나 처분된 유성잔류물의 양, 비어있는 탱크 및 계속 보유되는 내용물의 총량을 기록한다(m³)
State quantity of oil residues transferred or disposed of, the tank(s) emptied and the quantity of contents retained in m³ |
| | .1 | 수용시설에의 처분(항구명을 표시할 것) ²⁾
to reception facilities (identify port) ²⁾ |
| | .2 | 다른 탱크로(탱크 및 탱크에 저장된 총량을 표시할 것)
to another (other) tank(s) (indicate tank(s) and the total content of tank(s)) |
| | .3 | 소각(소각기의 총 작동시간을 표시할 것)
incinerated (indicate total time of operation) |
| | .4 | 그 밖의 방법(기술할 것)
other method (state which) |
| (D) | | 기관구역 빌지의 비자동시동방식에 의한 선외배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이송 또는 처분
Non-automatic starting of discharge overboard, transfer or disposal otherwise of bilge water which has accumulated in machinery spaces |
| | 13 | 배출 또는 이송한 양 또는 처분한 양(m³) ²⁾
Quantity discharged, transferred or disposed of, in m³ ²⁾ |
| | 14 | 배출, 이송 또는 처분시각(시각 및 종료)
Time of discharge, transfer, or disposal (start and stop) |
| | 15 | 배출, 이송 또는 처분방법
Method of discharge, transfer, or disposal |
| | .1 | 15ppm 장치를 통한 배출(시작 및 종료한 당시의 위치를 기술할 것)
through 15ppm equipment (state position at start and end) |
| | .2 | 수용시설에의 처분(항구명을 표시할 것) ²⁾
to reception facilities (identify port) ²⁾ |
| | .3 | 혼합물탱크, 저장탱크 또는 다른 탱크로(탱크의 식별기호를 표시할 것 ; 탱크에 남아 있는 총량을 기술할 것, m³)
to slop tank or holding tank or other tank(s) (indicate tank(s); state the total quantity retained in tank(s), in m³) |
| (E) | | 기관구역 빌지의 자동시동방식에 의한 선외배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처분
Automatic starting of discharge overboard or disposal otherwise of bilge water which has accumulated in machinery spaces |
| | 16 | 15ppm 설비를 통해 선외배출을 위하여 장치를 자동작동방식으로 한 시각 및 선박의 위치
Time and position of ship at which the system has been put into automatic mode of operation for discharge overboard, through 15ppm Equipment |

(제6쪽)

| | | |
|-----|----|--|
| | 17 | 빌지를 저장탱크로 이송하기 위하여 장치를 자동작동방식으로 한 시각
(탱크의 식별기호를 표시할 것)
Time when the system has been put into automatic mode of operation for transfer of bilge water to holding tank (identify tank) |
| | 18 | 장치를 수동 작업으로 한 시각
Time when the system has been put into manual operation |
| (F) | | 기름여과장치의 상태
Condition of the oil filtering equipment |
| | 19 | 장치가 고장난 시각 ²⁴⁾
Time of system failure ⁴⁾ |
| | 20 | 장치가 작동 가능한 상태로 된 시각
Time when system has been made operational |
| | 21 | 고장원인
Reasons for failure |
| (G) | | 사고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예외적인 기름의 배출
Accidental or other exceptional discharges of oil |
| | 22 | 배출시각
Time of occurrence |
| | 23 | 배출 당시의 선박의 위치 또는 장소
Place or position of ship at time of occurrence |
| | 24 | 기름의 종류 및 추정량
Approximate quantity and type of oil |
| | 25 | 배출 또는 유출 상황 및 원인과 일반적인 사항
Circumstances of discharge or escape, the reasons therefor and general remarks. |
| (H) | | 연료 또는 산적 윤활유의 적재
Bunkering of fuel or bulk lubricating oil |
| | 26 | 연료유 적재:
Bunkering: |
| | .1 | 연료유 적재 장소.
Place of bunkering. |
| | .2 | 연료유 적재 시간.
Time of bunkering. |
| | .3 | 연료유 형식 및 양과 탱크의 식별기호.(추가된 양 및 탱크의 총량을 톤 단위로 기재할 것)
Type and quantity of fuel oil and identity of tank(s) |
| | .4 | (state quantity added, in tonnes and total content of tank(s))
윤활유의 형식 및 양과 탱크의 식별기호.(추가된 양 및 탱크의 총 보유량을 톤 단위로 기재할 것)
Type and quantity of lubricating oil and identity of tank(s)
(state quantity added, in tonnes and total content of tank(s)) |

(제7쪽)

| | |
|-----|---|
| (D) | <p>그 밖의 작동절차 및 일반사항
Additional operational procedures and general remarks</p> <p>주1) 슬러지를 위해 사용되는 IOPP 증서 추록 서식 A 및 B의 제3.1항에 기입되어 있는 탱크에만 적용
Tanks listed in item 3.1 of form A and B of the supplement in the IOPP Certificate used for sludge</p> <p>주2) 선장은 부선 및 탱크트럭을 포함하는 수용시설의 운항자로부터 이송일자 및 시각의 기록과 함께 이송된 탱크 세정수, 오염된 평형수, 잔유물 또는 유성혼합물을 상세히 기술한 영수증 또는 증서를 받아야 한다. 증서 또는 영수증이 기름기록부에 첨부되어 있는 경우, 증서 또는 영수증은 선장이 해당 선박이 추정된 오염사고에 연루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이 영수증 또는 증서는 기름기록부와 함께 보관되어야 한다.
Ships' masters should obtain from the operator of the reception facilities, which include barges and tank trucks, a receipt or certificate detailing the quantity of tank washings, dirty ballast, residues or oily mixtures transferred, together with the time and date of the transfer. This receipt or certificate, if attached to the Oil Record Book, may aid the master of the ship in proving that his ship was not involved in an alleged pollution incident. The receipt or certificate should be kept together with the Oil Record Book.</p> <p>주3) 저장탱크로부터 빙지수를 배출 또는 처분한 경우 식별기호, 저장탱크의 용량, 저장 탱크에 저장된 양을 기재한다.
In case of discharge or disposal of bilge water from holding tank(s), state identity and capacity of holding tank(s) and quantity retained in holding tank.</p> <p>주4) 해당되는 경우, 기름여과장치에는 경보장치와 자동정지장치도 포함된다.
The condition of the oil filtering equipment covers also the alarm and automatic stopping devices, if applicable.</p> |
|-----|---|

(제8쪽)

기름기록부
OIL RECORD BOOK

화물유 및 평형수에 관한 작업
Cargo/ballast operations

(유조선)
(Oil tankers)

선명:
Name of ship

선박번호 또는 신호부자: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총톤수:
Gross tonnage

기간: 부터 까지
Period : from _____ to _____

210mm × 297mm[인쇄용지(특) 100g/m²]

(제9쪽)

화물창 및 슬롭탱크의 평면도
PLAN VIEW OF CARGO AND SLOP TANKS

(선 안에서 기재할 것)
(to be completed on board)



| 탱크의 식별번호
Identification of the tanks | 용량
Capacity |
|---|----------------|
| | |
| | |
| | |
| | |
| | |
| 슬롭탱크의 깊이
Depth of slop tank(s): | |

(각 탱크의 용량 및 슬롭탱크의 깊이를 표시할 것)
(Give the capacity of each tank and the depth of slop tank(s))

(제10쪽)

| 일자
Date | 부호(문자)
Code(Letter) | 항목(번호)
Item(Number) | 작업기록 및 작업책임자의 서명
Record of Operations/Signature of
Officer in Charg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름오염방지관리인의 서명:
 Signature of officer in charge of the prevention of oil pollution
 (기름오염방지관리인이 선임된 선박만 해당한다)
 (Applicable only to the ship for which the above officer is designated)

선장의 서명:
 Signature of Master

(제11쪽)

비고

1. 다음 표에 기재된 작업이 선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일자와 해당 작업의 내용을 표시하는 부호 및 번호를 기록하고 필요한 상세사항을 작업 기록 및 해당 작업 책임자의 서명란에 적을 것

Whenever any of the operation described in the table below take place in the ship, the date, operational code and item number shall be inserted in the appropriate columns and the required particular shall be recorded chronologically in the column of Record of operations/signature of officer in charge.

2. 기름기록부는 한글로 기록하여야 하며 IOPP증서를 소지하는 선박은 영어로 기록하거나 병기할 것

The entries in the Oil Record Book shall be in Korean, and, for ships holding an IOPP Certificate, in English in parallel with Korean or in English only.

기록하여야 할 작업의 내용과 그 부호 및 항목

Contents of Work, Code and Item to be Recorded

| 부호
Code | 항목
Item | 기록할 사항의 목록
List of Items to be Recorded |
|------------|------------|--|
| (A) | | 화물유의 적재
Loading of oil cargo |
| | 1 | 적재장소
Place of loading |
| | 2 | 적재한 기름의 종류 및 탱크의 식별기호
Type of oil loaded and identity of tank(s) |
| | 3 | 적재한 기름의 총량(15°C에서 추가된 양 및 탱크의 총보유량을 기재할 것, m³)
Total quantity of oil loaded (state quantity added, in m³ at 15°C and the total content of tank(s), in m³) |
| (B) | | 항해 중에 실시한 화물유의 선내이송
Internal transfer of oil cargo during voyage |
| | 4 | 탱크의 식별기호
Identity of the tank(s) |
| | .1 | 어느 탱크에서
from |
| | .2 | 어느 탱크로: (이송된 양 및 탱크의 총용량을 기재할 것, m³)
to: (state quantity transferred and total quantity of tank(s), in m³) |
| | 5 | 4.1의 탱크는 완전히 비었는가?(그렇지 않다면, 보관되고 있는 양을 기재할 것, m³)
Was(were) the tank(s) in 4.1 emptied ? (If not, state quantity retained., in m³) |
| (C) | | 화물유의 양하
Unloading of oil cargo |
| | 6 | 양하장소
Place of unloading |
| | 7 | 기름을 양하한 탱크의 식별기호
Identity of tank(s) unloaded |

(제12쪽)

| | | |
|-----|----|--|
| | 8 | 탱크는 완전히 비었는가?(그렇지 않다면, 보관되고 있는 양을 기재할 것, m³)
Was(were) the tank(s) emptied?(If not, state the quantity retained., in m³) |
| (D) | | 원유세정(원유세정방식으로 운항하는 원유조선에만 적용)
Crude oil washing(COW tankers only)
(원유세정을 실시하는 탱크마다 기재할 것)
(To be completed for each tank being crude oil washed) |
| | 9 | 원유세정을 실시한 항구 또는 화물을 양하한 2항구 사이에서 원유세정이 실시된 경우에는 원유세정을 실시한 당시의 선박의 위치
Port where crude oil washing was carried out or ship's position if carried out between two discharge ports |
| | 10 | 세정한 탱크의 식별기호 ^{주1)}
Identity of tank(s) washed ¹⁾ |
| | 11 | 사용한 세정기의 수
Number of machines in use |
| | 12 | 세정을 시작한 시각
Time of start of washing |
| | 13 | 사용한 세정방식 ^{주2)}
Washing pattern employed ²⁾ |
| | 14 | 세정관의 압력
Washing line pressure |
| | 15 | 세정을 종료하거나 정지한 시각
Time washing was completed of stopped |
| | 16 | 탱크가 비어졌음을 확인한 방법
State method of establishing that tank(s) was(were) dry |
| | 17 | 비고 ^{주3)}
Remarks ³⁾ |
| (E) | | 화물창에의 평형수의 적재
Ballasting of cargo tanks |
| | 18 | 평형수의 적재 시작 및 종료 시 선박의 위치
Position of ship at start and end of ballasting |
| | 19 | 평형수의 절차
Ballasting process |
| | .1 | 평형수를 적재한 탱크의 식별기호
identity of tank(s) ballasted |
| | .2 | 시작과 종료 시의 시각
time of start and end |
| | .3 | 받은 평형수의 양, 평형수 작업에 관계된 각 탱크에 대해서 평형수의 총량을 기재할 것
quantity of ballast received. Indicate total quantity of ballast for each tank involved in the operation |

(제13쪽)

| | | |
|-----|-----|---|
| (F) | | 맑은평형수탱크에의 평형수의 적재(맑은평형수방식으로 운항하는 유조선에만 적용)
Ballasting of dedicated clean ballast tanks(CBT tankers only) |
| | 20 | 평형수를 적재한 탱크의 식별기호
Identity of tank(s) ballasted |
| | 21 | 맑은평형수탱크에 세정용 물을 넣었거나 항내에서 평형수를 적재한 당시의 선박의 위치
Position of ship when water intended for flushing, or port ballast was taken to dedicated clean ballast tank(s) |
| | 22 | 슬롭탱크로 통하는 펌프 및 관을 세정한 당시의 선박의 위치
Position of ship when pump(s) and lines were flushed to slop tank |
| | 23 | 관의 세정 후 슬롭탱크 또는 슬롭이 최초로 저장된 화물창으로 이송된 유성혼합물의 양. 총량을 기재할 것(m³)
Quantity of the oily water which, after line flushing, is transferred to the slop tank(s) or cargo tank(s) in which slop is preliminarily stored (identify tank(s)). State the total quantity, in m³ |
| | 24 | 맑은평형수탱크에 추가로 평형수를 적재한 당시의 선박의 위치
Position of ship when additional ballast water was taken to dedicated clean ballast tank(s) |
| | 25 | 화물유관 및 스트리핑관으로부터 맑은평형수탱크를 분리하는 밸브를 폐쇄한 시각 및 당시의 선박의 위치
Time and position of ship when valves separating the dedicated clean ballast tanks from cargo and stripping lines were closed |
| | 26 | 선내에 적재된 맑은평형수의 양(m³)
Quantity of clean ballast taken on board, in m³ |
| | (G) | 화물창의 세정
Cleaning of cargo tanks |
| | 27 | 세정한 탱크의 식별기호
Identity of tank(s) cleaned |
| | 28 | 항구 또는 선박의 위치
Port or ship's position |
| | 29 | 세정에 소요된 시간
Duration of cleaning |
| | 30 | 세정방식 ⁴⁾
Method of cleaning ⁴⁾ |
| | 31 | 탱크 세정수는
Tank washings transferred to |
| | .1 | 수용시설에 처분하였다(항구 및 양을 기재할 것, m³) ⁵⁾
reception facilities(state port and quantity, in m³) ⁵⁾ |
| | .2 | 슬롭탱크 또는 슬롭탱크로 지정된 화물창에 이송하였다(탱크의 식별기호를 표시할 것; 이송된 양 및 총량을 기재할 것, m³)
slop tank(s) or cargo tank(s) designated as slop tank(s)
(identify tank(s);state quantity transferred and total quantity, in m³) |

(제14쪽)

| | | |
|-----|----|---|
| (H) | | 오염된 평형수의 배출
Discharge of dirty ballast |
| | 32 | 탱크의 식별기호
Identity of tank(s) |
| | 33 | 해양에 배출을 시작한 당시의 시각 및 선박의 위치
Time and position of ship at start of discharge into the sea |
| | 34 | 해양에 배출을 종료한 당시의 시각 및 선박의 위치
Time and position of ship on completion of discharge into the sea |
| | 35 | 해양에 배출한 양(m^3)
Quantity discharged into the sea, in m^3 |
| | 36 | 배출 중 선박의 속도
Ship's speed(s) during discharge |
| | 37 | 배출 중에 평형수용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는 작동하고 있었는가?
Was the discharge monitoring and control system in operation during the discharge? |
| | 38 | 배출 중에 오염된 평형수 및 배출장소의 해면에 대한 정기적인 감시를 계속하였는가?
Was a regular check kept on the effluent and the surface of the water in the locality of the discharge? |
| | 39 | 슬롭탱크에 이송된 유성혼합물의 양(슬롭탱크의 식별기호를 표시할 것).
총량을 기재할 것(m^3)
Quantity of oily water transferred to slop tank(s) (identify slop tank(s)).
State total quantity, in m^3 |
| | 40 | 육상수용시설에의 처분(항구명 및 처분된 양을 표시할 것, m^3) ⁵⁾
Discharged to shore reception facilities (identify port and quantity involved, in m^3) ⁵⁾ |
| | 41 | 슬롭탱크의 식별기호
Identity of slop tanks |
| (I) | | 슬롭탱크로부터의 물의 배출
Discharge of water from slop tanks into the sea |
| | 42 | 잔류물을 최후로 넣은 후의 침전 시간, 또는
Time of settling from last entry of residues, or |
| | 43 | 전회의 배출로부터 침전 시간
Time of settling from last discharge |
| | 44 | 배출을 시작한 시각 및 당해 배출을 시작한 당시의 선박의 위치
Time and position of ship at start of discharge |
| | 45 | 배출을 시작한 시각에 있어서 내용물의 얼리지
Ullage of total contents at start of discharge. |
| | 46 | 배출을 시작한 시각에 있어서 유수경계면의 얼리지
Ullage of oil/water interface at start of discharge |
| | 47 | 최종단계 전에 배출한 양(m^3) 및 배출율(시간당 m^3)
Bulk quantity discharged, in m^3 and rate of discharge, in m^3 /hour |
| | 48 | 최종단계에서 배출한 양(m^3) 및 배출율(시간당 m^3)
Final quantity discharged, in m^3 and rate of discharge, in m^3 /hour |

(제15쪽)

| | | |
|-----|----|--|
| | 49 | 배출을 종료한 시각 및 당해 배출을 종료한 당시의 선박의 위치
Time and position of ship on completion of discharge |
| | 50 | 배출 중에 평형수 배출감시제어장치는 작동하고 있었는가?
Was the discharge monitoring and control system in operation during the discharge? |
| | 51 | 배출을 종료한 시각에 있어서 유수경계면의 얼리지(m)
Ullage of oil/water interface on completion of discharge, in m |
| | 52 | 배출 중의 선박의 속력
Ship's speed(s) during discharge |
| | 53 | 유출액 및 배출장소의 해면에 대한 정기적인 감시는 계속하였는가?
Was a regular check kept on the effluent and the surface of the water in the locality of the discharge? |
| | 54 | 슬롭탱크로부터의 배출을 종료한 시각에 선박의 관장치에 관련된 모든 밸브가 폐쇄되었음을 확인할 것
Confirm that all applicable valves in the ship's piping system have been closed on completion of discharge from the slop tanks |
| (J) | | 그 밖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잔류물 및 유성혼합물의 저장, 이송 및 처분
Collection, transfer and disposal of residues and oily mixtures not otherwise dealt with |
| | 55 | 탱크의 식별기호
Identity of tank(s) |
| | 56 | 각 탱크로부터 이송 또는 처분한 양(보관되고 있는 양을 표시할 것, m³)
Quantity transferred or disposed of from each tank.(State the quantity retained, in m³.) |
| | 57 | 이송 또는 처분방법
Method of transfer or disposal |
| | .1 | 수용시설에의 처분(항구명 및 처분된 양을 표시할 것) ²⁾⁵⁾
disposal to reception facilities (identify port and quantity involved) ⁵⁾ |
| | .2 | 화물유와의 혼합(양을 표시할 것)
mixed with cargo (state quantity) |
| | .3 | 기관구역의 유성찌꺼기탱크 및 선저폐수저장탱크로부터의 이송을 포함하여, 다른 탱크로 이송 또는 다른 탱크로부터의 이송(탱크의 식별기호를 표시할 것; 이송된 양과 탱크안의 총량을 표시할 것, m³)
transferred to or from (an)other tank(s) including transfer from machinery space oil residue (sludge) and oily bilge water tanks (identify tank(s)); state quantity transferred and total quantity in tank(s), in m³ |
| | .4 | 그 밖의 방법(방법을 표시할 것); 처분된 양을 표시할 것(m³)
other method (state which); state quantity disposed of, in m³ |
| (K) | | 화물창에 격재되어 있는 맑은평형수의 배출 |
| | 58 | Discharge of clean ballast contained in cargo tanks
맑은평형수의 배출을 시작한 당시의 선박의 위치 |
| | 59 | Position of ship at start of discharge of clean ballast
맑은평형수를 배출한 탱크의 식별기호 |
| | 60 | Identity of tank(s) discharged
배출을 종료한 당시 탱크는 비었는가?
Was(were) the tank(s) empty on completion? |

(제16쪽)

| | | |
|-----|----|--|
| (L) | 61 | 배출을 종료한 당시의 선박의 위치(58항의 위치와 다른 경우에 한함).
Position of ship on completion if different from 58. |
| | 62 | 배출중의 맑은평형수 및 배출장소의 해면에 대한 정기적인 감시는 계속하였는가?
Was a regular check kept on the effluent and the surface of the water in the locality of the discharge? |
| | | 맑은평형수탱크로부터 평형수의 배출(맑은평형수방식으로 운항하는 유조선에만 적용)
Discharge of ballast from dedicated clean ballast tanks(CBT tankers only) |
| | 63 | 배출한 탱크의 식별기호
Identity of tank(s) discharged |
| | 64 | 해양에 맑은평형수의 배출을 시작한 시각 및 시작한 당시의 선박의 위치
Time and position of ship at start of discharge of clean ballast into the sea |
| | 65 | 해양에 배출을 종료한 시각 및 종료한 당시의 선박의 위치
Time and position of ship on completion of discharge into the sea |
| | 66 | 배출한 양(m³)
Quantity discharged, in m³ |
| | .1 | 해양에 배출한 양; 또는
into the sea; or |
| | .2 | 수용시설에 처분한 양(항구명을 표시할 것)
to reception facility (identify port) |
| | 67 | 평형수의 배출전 또는 배출중 기름에 의한 오염이 확인되었는가?
Was there any indication of oil contamination of the ballast water before or during discharge into the sea? |
| (M) | 68 | 배출은 유분농도계로 감시되었는가?
Was the discharge monitored by an oil content meter? |
| | 69 | 평형수의 배출 종료시 화물유관 및 스트리핑관으로부터 맑은평형수탱크를 분리하는 밸브를 폐쇄한 당시의 선박의 위치
Time and position of ship when valves separating dedicated clean ballast tanks from the cargo and stripping lines were closed on completion of deballasting |
| | | 평형수 배출감시제어장치의 상태
Condition of oil discharge monitoring and control system |
| | | 장치가 고장난 시각
Time of system failure |
| | 70 | 장치가 작동 가능한 상태로 된 시각
Time when system has been made operational |
| (N) | 71 | 고장의 원인
Reasons for failure |
| | 72 | |
| | | 사고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예외적인 기름의 배출
Accidental or other exceptional discharges of oil |

(제17쪽)

| | |
|----|--|
| 73 | 배출시각
Time of occurrence |
| 74 | 배출 당시의 선박의 위치 또는 항구명
Port or ship's position at time of occurrence |
| 75 | 배출된 기름의 종류 및 추정량(m³)
Approximate quantity, in m³, and type of oil |
| 76 | 배출 또는 유실의 상황과 원인 및 일반적인 사항
Circumstances of discharge or escape, the reasons therefore and general remarks
그 밖의 조작 및 일반적인 사항
Additional operational procedures and general remarks |
| | <p>주 1) 조작 및 설비지침서에 기재되어 있는 동시조작이 가능한 것보다 많은 세정기가 개개의 탱크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유세정을 실시한 부분(예를 들면 No. 2 센터탱크의 전방부분)을 표시할 것</p> <p>When an individual tank has more machines than can be operated simultaneously, as described in the Operations and Equipment Manual, then the section being crude oil washed should be identified, e.g. No.2 centre, forward section</p> <p>주 2) 조작 및 설비지침서에 따라서 사용한 세정방식이 1단계 세정방식인가 또는 다단식 세정방식인가를 기재할 것. 다단식의 세정방식을 사용한 경우에는 단계마다 세정기가 세정한 수직방향의 각도 및 횡수를 기재할 것</p> <p>In accordance with the Operations and Equipment Manual, enter whether single-stage or multi-stage method of washing is employed. If multi-stage method is used, give the vertical arc covered by the machines and the number of times that arc is covered for that particular stage of the programme</p> <p>주 3) 조작 및 설비지침서에 기재되어 있는 세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할 것</p> <p>If the programmes given in the Operations and Equipment Manual are not followed, then the reasons must be given under Remarks</p> <p>주 4) 호스에 의한 세정인가, 기계에 의한 세정인가, 화학약품에 의한 세정인가, 또는 이들을 병용한 세정인가를 기재할 것. 화학약품에 의한 세정인 경우에는 화학약품명 및 사용량을 기재할 것</p> <p>Hand-hosing, machine washing and/or chemical cleaning. Where chemically cleaned, the chemical concerned and amount used should be stated</p> <p>주 5) 선장은 부선 및 탱크트럭을 포함하는 수용시설의 운항자로부터 이송일자 및 시각과 함께 이송된 탱크 세정수, 오염된 평형수, 잔류물 또는 유성혼합물을 상세히 기술하는 영수증 또는 증서를 받아야 한다. 증서 또는 영수증이 기름기록부에 첨부되어 있는 경우, 증서 또는 영수증은 선장이 해당 선박이 추정된 오염사고에 연루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이 영수증 또는 증서는 기름기록부와 함께 보관되어야 한다.</p> |

(제18쪽)

| | | |
|--|----|---|
| | | Ship's masters should obtain from the operator of the reception facilities, which include barges and tank trucks, a receipt or certificate detailing the quantity of tank washings, dirty ballast, residues or oily mixtures transferred, together with the time and date of the transfer. This receipt or certificate, if attached to the Oil Record Book, may aid the master of the ship in proving that his ship was not involved in an alleged pollution incident. The receipt or certificate should be kept together with the Oil Record Book. |
| 특수한 운항에 종사하는 유조선
TANKERS ENGAGED IN SPECIFIC TRADES | | |
| (P) | | 평형수의 적재
Loading of ballast water |
| | 77 | 평형수를 적재한 탱크의 식별기호
Identity of tank(s) ballasted |
| | 78 | 평형수를 적재한 당시의 선박의 위치
Position of ship when ballasted |
| | 79 | 적재한 평형수의 총량(입방미터로 표시할 것)
Total quantity of ballast loaded in cubic metres |
| | 80 | 비고
Remarks |
| (Q) | | 평형수의 선내이송
Re-allocation of ballast water within the ship |
| | 81 | 선내 이송한 사유
Reasons for re-allocation. |
| (R) | | 평형수의 수용시설에의 처분
Ballast water discharge to reception facility |
| | 82 | 평형수를 처분한 항구명
Port(s) where ballast water was discharged |
| | 83 | 수용시설의 명칭
Name or designation of reception facility |
| | 84 | 배출된 평형수의 총량(입방미터로 표시할 것)
Total quantity of ballast water discharged in cubic metres |
| | 85 | 기재일, 항만당국의 직원의 서명 및 검인
Date, signature and stamp of port authority official |

[별지 제4호서식]

(제1쪽)

유해액체물질기특부

CARGO RECORD BOOK FOR SHIPS CARRYING
NOXIOUS LIQUID SUBSTANCES IN BULK

선명:

Name of ship

선박번호 또는 신호부자: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총토수:

Gross tonnage

기간: 부터 까지

Period: from to

210mm × 297mm [인쇄용지(특) 100g/m²]

(제2쪽)

화물창 및 혼합물탱크의 평면도
PLAN VIEW OF CARGO AND SLOP TANKS

(선 안에서 기재할 것)
(to be completed on board)

| |
|------------------|
| |
| |
| 펌프실
pump room |
| |

| 탱크의 식별번호
Identification of the Tanks | 용량
Capacity |
|---|----------------|
| | |
| | |
| | |
| | |
| | |
| | |

(각 탱크의 용량을 입방미터로 표시할 것)
(Give the capacity of each tank in cubic metres)

(제3쪽)

| 일자
Date | 부호(알파벳)
Code(letter) | 항목(번호)
Item(number) | 작업기록 및 작업책임자의 서명/인가된 검사원의 성명 및 서명
Record of Operations/Signature of Officer in Charge/
Name of and Signature of Authorized Surveyo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해액체물질 오염방지 관리자의 서명:
Signature of officer in charge of the
prevention of Noxious Liquid Substances
Pollution
(유해액체물질 오염방지 관리자가 위임되
어 있는 선박으로 한정함)
(Applicable only to the ship for which the
above officer is designated)

선장의 서명:
Signature of Master

(제4쪽)

기록하여야 할 작업의 내용과 그 부호 및 항목

| 부호
Code | 항목
Item | 기록할 사항의 목록
List of Items to be Recorded |
|------------|------------|---|
| (A) | | 화물의 적하
Loading of cargo |
| | 1 | 적하장소
Place of loading. |
| | 2 | 탱크의 식별기호 및 물질의 명칭과 종류
Identify tank(s), name of substance(s) and category(ies) |
| (B) | | 화물의 선내이송
Internal transfer of cargo |
| | 3 | 이송된 화물의 명칭과 분류
Name and category of cargo(es) transferred. |
| | 4 | 탱크의 식별기호:
Identity of tanks: |
| | .1 | 어느 탱크에서:
from: |
| | .2 | 어느 탱크로:
to: |
| | 5 | 4.1의 탱크는 비었는가?
Was(were) tank(s) in 4.1 emptied? |
| | 6 | 비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탱크에 남아 있는 양.
If not, quantity remaining tank(s). |
| (C) | | 화물의 양하
Unloading of cargo |
| | 7 | 양하장소
Place of unloading |
| | 8 | 양하된 탱크의 식별기호
Identity of tank(s) unloaded |
| | 9 | 탱크가 비었는가?
Was(were) tank(s) emptied? |
| | 1. | 비어있는 경우에는 비우고 스트리핑 하는데 사용된 방법이 본선의 배출방법 및 설계 지침에 따라서 행하여 졌는가를 확인한다.(예를 들면, 횡경사, 트림 및 스트리핑 온도)
if yes, confirm that the procedure for emptying and stripping has been performed in accordance with the ship's Procedures and Arrangements Manual(i.e. list, trim, stripping temperature). |

(제5쪽)

| | | |
|-----|----|---|
| | .2 | 비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탱크에 남아있는 양
if not, quantity remaining tank(s) |
| | 10 | 본선의 배출방법 및 설계지침이 예비세정을 행할 것과 그 세정수를 수용시설에 배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가?
Does the ship's Procedures and Arrangements Manual require a prewash with subsequent disposal to reception facilities? |
| | 11 | 펌핑장치 또는 스트리핑장치의 고장
Failure of pumping and/or stripping system |
| | .1 | 고장난 시각 및 고장의 상태
time and nature of failure |
| | .2 | 고장의 원인
reasons for failure |
| | .3 | 장치가 작동가능하게 된 시각
time when system has been made operational |
| (D) | | 본선의 배출방법 및 설계지침에 의한 강제예비세정
Mandatory prewash in accordance with the ship's Procedures and Arrangements Manual |
| | 12 | 탱크의 식별기호 및 물질의 명칭과 종류
Identify tank(s), substance(s) and category(ies) |
| | 13 | 세정방법
Washing method |
| | .1 | 탱크당 세정기의 수
number of washing machines per tank |
| | .2 | 세정시간 또는 세정주기
duration of wash/washing cycles |
| | .3 | 온수세정 또는 냉수세정
hot/cold wash |
| | 14 | 예비세정에 의하여 생기는 혼합물(Slop)은
Prewash slops transferred to |
| | .1 | 화물 양하항의 수용시설에 배출되었다(항구명을 표시할 것)
reception facility in unloading port(identify port) |
| | .2 | 그 밖의 수용시설에 배출되었다(항구명을 표시할 것)
reception facility otherwise(identify port) |
| (E) | | 강제예비세정 이외의 화물창의 세정(그 밖의 예비세정작업, 최종세정, 통풍 등)
Cleaning of cargo tanks except mandatory prewash (other prewash operations, final wash, ventilation etc.) |

(제6쪽)

| | | |
|-----|----|--|
| | 15 | 시간, 탱크의 식별기호 및 물질의 명칭과 범주를 표시하고 다음 사항을 기입할 것
State time, identify tank(s), substance(s) and category(ies) and state: |
| | .1 | 사용된 세정방법
washing procedure used |
| | .2 | 화학세제(세제명 및 양을 표시할 것)
cleaning agent(s) (identify agent(s) and quantities) |
| | .3 | 사용된 통풍방법(사용된 통풍기의 수 및 통풍시간을 기재)
ventilation procedure used(state number of fans used, duration of ventilation) |
| | 16 | 탱크 세정수는
Tank washings transferred |
| | .1 | 해양에 배출되었다
into the sea |
| | .2 | 수용시설에 배출되었다(항구명을 표시할 것)
to reception facility(identify port) |
| | .3 | 혼합물(Slop) 집수탱크에 이송되었다(탱크 식별기호를 표시할 것)
to slops collecting tank(identify tank) |
| (F) | | 탱크 세정수의 해양에의 배출
Discharge into the sea of tank washings |
| | 17 | 탱크의 식별기호
Identify tank(s) |
| | .1 | 탱크 세정 중에 탱크 세정수가 배출되었는가? 배출되었다면 배출율을 표시할 것?
Were tank washings discharged during cleaning of tank(s)? If so, at what rate?
혼합물(Slop)집수 탱크에서 탱크세정수가 배출되었는가? |
| | .2 | 배출되었다면 배출된 양 및 배출율을 표시할 것
Were tank washing(s) discharged from a slops collecting tank?
If so, state quantity and rate of discharge |
| | 18 | 배출개시 및 정지시각
Time pumping commenced and stopped |
| | 19 | 배출 중 선박의 종류
Ship's speed during discharge |
| (G) | | 화물창에의 평형수의 적재
Ballasting of cargo tanks |
| | 20 | 평형수를 적재한 탱크의 식별기호
Identity of tank(s) ballasted |
| | 21 | 평형수 적재를 개시한 시각
Time at start of ballasting |
| (H) | | 화물창으로부터의 평형수의 배출 |

(제7쪽)

| | | |
|-----|----|---|
| | | Discharge of ballast water from cargo tanks |
| | 22 | 탱크의 식별기호
Identity of tank(s) |
| | 23 | 평형수의 배출
Discharge of ballast |
| | .1 | 해양에의 배출
into the sea |
| | .2 | 수용시설에의 배출(항구명을 표시할 것)
to reception facilities(identify port) |
| | 24 | 평형수 배출개시 및 정지시각
Time ballast discharge commenced and stopped |
| | 25 | 배출중 선박의 속력
Ship's speed during discharge |
| (I) | | 사고 또는 그 밖의 이유에 의한 예외적인 배출
Accidental or other exceptional discharge |
| | 26 | 배출시각
Time of occurrence |
| | 27 | 추정 배출량, 명칭 및 범주
Approximate quantity, substance(s) and category(ies) |
| | 28 | 배출 또는 유실의 상황 및 일반기술
Circumstances of discharge or escape and general remarks |
| (J) | | 인가된 검사원에 의한 규제
Control by authorized surveyors |
| | 29 | 항구명을 표시할 것
Identify port |
| | 30 | 육상으로 배출된 경우에는 탱크의 식별기호, 물질의 명칭 및 종류를 표시할 것
Identify tank(s), substance(s), category(ies) discharged ashore |
| | 31 | 탱크, 펌프 및 배관장치는 비었는가?
Have tank(s), pump(s), and piping system(s) been emptied? |
| | 32 | 예비세정이 본선의 배출방법 및 설계지침에 따라서 행하여 졌는가?
Has a prewash in accordance with the ship's Procedures and Arrangements Manual been carried out? |
| | 33 | 예비세정에서 생기는 탱크세정수는 육상에 배출되었고 탱크는 비었는가?
Have tank washings resulting from the prewash been discharged ashore and is the tank empty? |
| | 34 | 강제예비세정의 면제가 인정된 경우에는 그 면제
An exemption has been granted from mandatory prewash |

(제8쪽)

| | | |
|-----|----|--|
| (K) | 35 | 면제의 이유
Reasons for exemption |
| | 36 | 인가된 검사원의 성명 및 서명
Name and signature of authorized surveyor |
| | 37 | 검사원이 소속된 기구, 회사, 정부단체
Organization, company, government agency for which surveyor works |
| | | 그 밖의 사항
Additional operational procedures and remarks |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23. 9. 1.>

전자기록부 검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25일 |
| 신청인 | 상호명(사업장 명칭) 또는 법인명 | | 성명(대표자) | |
| | 사업장 또는 법인 소재지 | | 전화번호 | |
| 선박
기본
정보 | 선명(Ship Name) | | 선박종류(ship type) | |
| | IMO No. | | 선박호출부호(Call Sign) | |
| | 선적항(Port of Registry) | | 총톤수(Gross Tonnage) | |
| 신청
내용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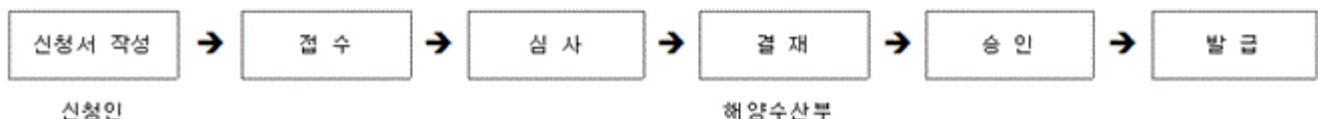
「해양환경관리법」 제30조의2제2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기록부 검사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
| 제출서류 | 1. 선박의 명칭과 총톤수 등 선박의 제원(諸元)
2. 전자기록부 제조업체의 명세
3. 별표 16의2에 따른 전자기록부의 설비 및 보안 등에 관한 기술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처리절차

210mm × 297mm (백상지 80g/m²)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신설 2023. 9. 1.>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 (Declaration of Electric Record Book)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MARPOL)의 요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에 의하여 발행 됨.

Issu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In reference to the requirements set out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MARPOL)

선명(Ship's name): _____

국제해사기구 번호(IMO No.): _____

선박 기국(Flag State of Ship): _____

총톤수(Gross tonnage): _____

이 적합확인서는 전자기록시스템이 국제협약 부속서에 명시한 요건..... 충족함을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평가되었음을 선언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국제해사기구가 개발한 지침과 일치한다.

This is to declare that the electronic system designed to record entries in accordance with MARPOL Annex(es) installed on board the ship listed above has been assessed by this

Administration to meet the relevant requirements as set out in MARPOL and is consistent with the Guidelines developed by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전자기록부 제조사 :

Electronic Record Book Manufacturer

전자기록부 공급자 :

Electronic Record Book Supplier

전자기록부 설치자 :

Electronic Record Book Installer

전자기록부 소프트웨어 명칭 및 버전 :

Electronic Record Book Software Name/Version

해양환경보호위원회 결의서 번호 :

Electronic Record Book is in accordance with MEPC. Resolution/s

전자기록부 설치일자 :

Date of installation(dd/mm/yy)

이 적합확인서의 사본은 전자기록부사 설치된 선박에 항상 보관되어야 합니다.

A copy of this declaration should be carried on board a ship fitted with this Electronic Record Book at all times.

년 월 일
 Year Month Day

해양수산부장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210mm×297mm(백상지 80g/m²)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8. 20.>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 점인
[] 변경점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
| | | | 7일 |
| 신청인 | 상호(사업장 명칭) 또는 법인명 | 성명(대표자) | |
| | 사업장 또는 법인 소재지 | 전화번호 | |
| 선박 | 선명 | 선박번호 | |
| | 국적(선적) | 총톤수 | |
| | 선박의 종류 | 재화중량톤수 | |
| | 주요 항로 | 건조 연월일 | |
| 변경
내용 | (변경 검인시에만 작성) | | |

「해양환경관리법」 제31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따라 선박해양
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변경검인)을 신청합니다.

15 16 17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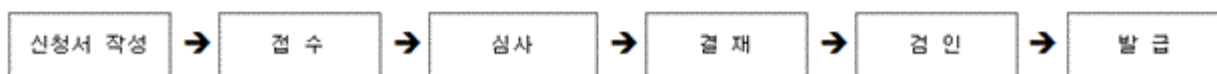
해양경찰청장 귀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귀하

선급법인의 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변경검인 시에는 변경된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1부 | 수수료 3,000원 |
|------|--|------------|

처리절차



신 청 인

처리기관: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급법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1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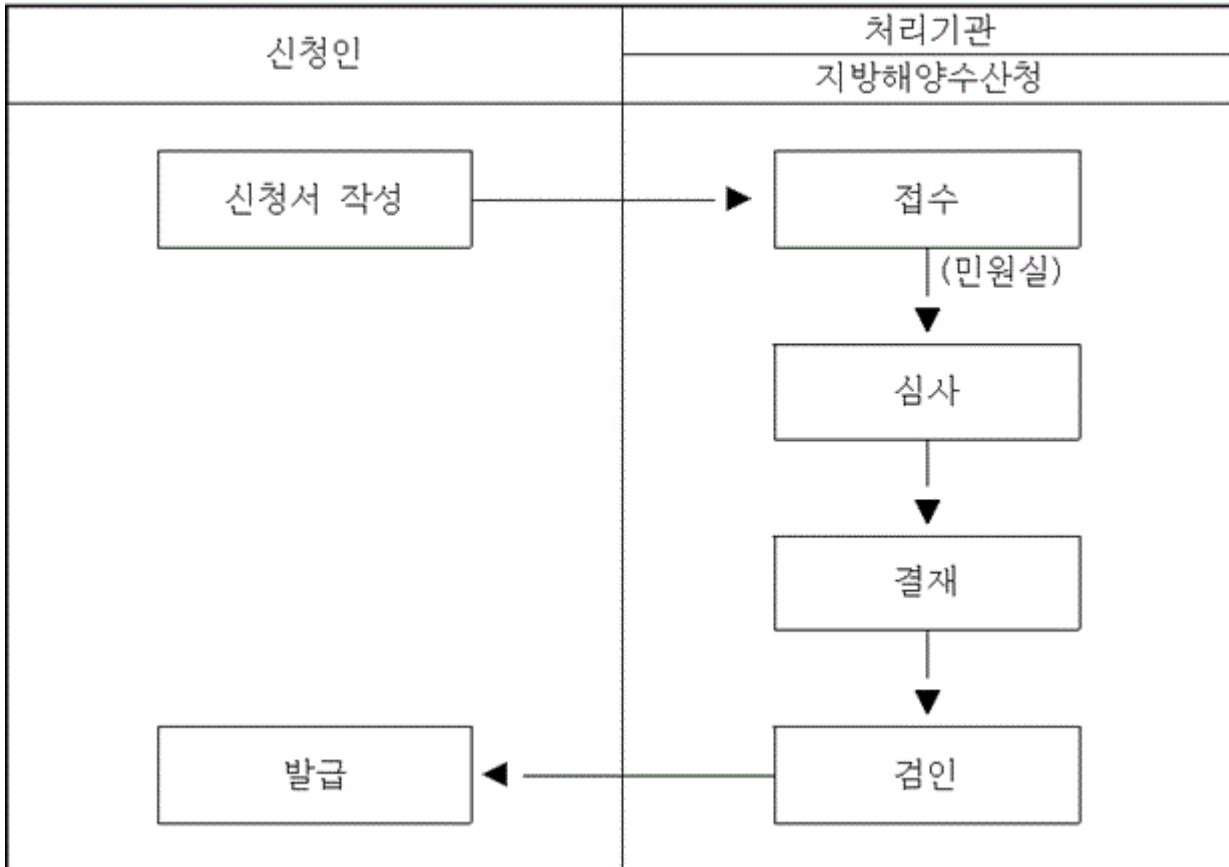
(앞쪽)

| | | | | |
|---|--------------------|--------|----------|-------|
|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 검인신청서 | | | | 처리기간 |
| | | | | 7일 |
| 신청인 | ①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 | | |
| | ② 주소 | (전화:) | | |
| 선박 | ③ 선명 | | ④ 선박번호 | |
| | ⑤ 총톤수 | | ⑥ 국적(선적) | |
| | ⑦ 선박의 종류 | | ⑧ 재화중량톤수 | |
| | ⑨ 주요항로 | | ⑩ 건조연월일 | |
| ⑪ 비고 | | | | |
| <p>「해양환경관리법」 제32조의2제1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검인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p> | | | | |
| 구비서류: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 2부 | | | | 수수료 |
| | | | | 3,000 |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신설 2020. 12. 24.>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검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25일 |
| 신청인 | 상호(사업장 명칭) 또는 법인명 | 성명(대표자) |
| | 사업장 또는 법인 소재지 | 전화번호 |
| 선박
기본정보 | 선박명(Ship Name) | 선박종류(Ship type) |
| | IMO No. | 선박호출부호(Call Sign) |
| | 선적항(Port of Registry) | 총톤수(Gross Tonnage) |
| 변경내용 | (변경 신청 시에만 작성) | |

「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의3제2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0조의4제3항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검사(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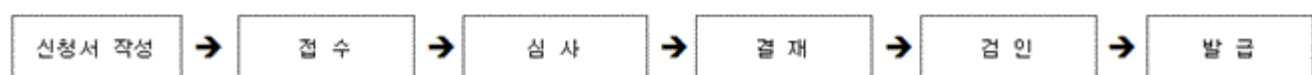
지방해양수산청장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선급법인의 장

| | | |
|------|------------------|---|
| 첨부서류 | 선박에너지 효율관리계획서 1부 | 수수료
대행검사가관이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한 수수료 |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해양수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급법인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의4서식] <개정 2023. 9. 1.>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_____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

CONFIRMATION OF COMPLIANCE — SEEMP PART II(III)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1973/1978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개정하기 위한 1997년 의정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의 권한으로 _____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Protocol of 1997, as amended, to ame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by Ships, 1973, as modified by the Protocol of 1978 related thereto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vention”)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by _____

선박의 명세
Particulars of Ship

| 선박명
Name of Ship | 선박번호 또는 호출부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 IMO 번호
IMO Number | 선적항
Port of registry | 총톤수
Gross tonnage |
|---------------------|--|----------------------|-------------------------|----------------------|
| | | | | |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part II(III) 개정일(해당되는 경우에 작성)
SEEMP part II(III) date of revision, as applicable

이 증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THIS IS TO CONFIRM:

결의서 MEPC.346(78)에 의해 채택된 2022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의 개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가 협약 부속서 6 제22.2(또는 제26.3.1) 규칙의 요건에 적합하게 작성되었음.

Taking into account the 2022 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of Ship Energy Efficiency Management Plan (SEEMP) adopted by resolution MEPC.346(78), the ship's SEEMP has been developed and complies with regulation 22.2(or 26.3.1) of Annex VI of the Convention.

년 월 일 에서 발행합니다. (증서의 발행 장소 및 일자)

Issued at (place of issue of Confirmation)

Date (dd/mm/yyyy) (date of issue)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 (인)
(Administrator of the Regional Maritime Affairs & Fisheries Office)

한 국 해 양 교 통 안 전 공 단 이 사 장 (인)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선 급 법 인 의 장 (인)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의5서식] <신설 2020. 12. 24.>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보고 및 검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 |
|-----------|-------------------|------|----------|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처리기간 25일 |
| 선박
소유자 | 상호(사업장 명칭) 또는 법인명 | | 성명(대표자) |
| | 사업장 또는 법인 소재지 | | 전화번호 |
| 선박 | 선박명 | 국문 | 선박번호 |
| | | 영문 | IMO번호 |
| | 선적항 | | 총톤수 |
| | 선박용도 | | 재화중량톤수 |
| | 비고 | | |

「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의4제1항 또는 제2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0조의5 제2항에 따라 선박연료유 사용량 등을 보고하고, 검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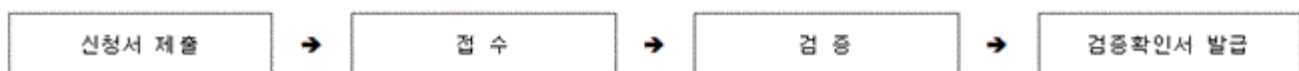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선급법인의 장

| | | |
|------|--|-----------|
| 첨부서류 | 1. 선박국적증서 사본
2.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및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 사본
3. 신청 직전의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 사본(최초로 검증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보고 대상 기간(이하 "보고기간"이라 합니다) 동안의 선박연료유 공급서 사본
5. 보고기간 동안의 선박의 운항거리와 운항시간, 선박연료유의 종류 및 사용량이 기재된 서류 사본
6. 보고기간의 시작일·종료일(보고기간의 절반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종료일의 기관일지 및 선박연료유 사용량을 보정한 경우 해당일의 기관일지 사본 | 수수로
없음 |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해양수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급법인

증서번호 제 _____ 호
Cert. No. _____



선박연료유 사용량 등 검증확인서 STATEMENT OF COMPLIANCE — FUEL OIL CONSUMPTION REPORTING AND OPERATIONAL CARBON INTENSITY RATING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이 확인서는 「1978년 의정서 및 1997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대한민국정부의 권한으로 _____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Protocol of 1997, as amended, to ame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1973, as modified by the Protocol of 1978 related thereto (herein after referred to as "the Convention")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by _____.

선박의 명세
Particulars of ship

| 선박명
Name of Ship | 선박번호 또는
호출부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 IMO 번호
IMO Number ¹⁾ | 선적항
Port of Registry | 총톤수
Gross Tonnage | 재화중량톤수
Deadweight | 선박의 종류
Type of Ship |
|---------------------|---|------------------------------------|-------------------------|----------------------|----------------------|------------------------|
| | | | | | | |

이 확인서는 다음 사항을 선언합니다. :
THIS IS TO DECLARE:

- 이 선박은 협약 부속서 VI의 제27규칙에 따라 보고해야 하는 정보 중 _____년 _____월 _____일
부터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의 운항기간에 해당하는 정보를 주관청에 제출함.
That the ship has submitted to this Administration the data required by regulation 27 of Annex VI
to the Convention, covering ship operations from ____/____/____ through ____/____/____;
- 이 정보는 _____년 _____월 _____일 부터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의 기간에 유효한 선박
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에 명시된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 수집되고 보고됨.
The data was collected and reported in accordance with the methodology and processes set out in the
ship's SEEMP that was in effect over the period from ____/____/____ through ____/____/____;
- 제28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협약 부속서 VI의 제28.1규칙 및 제28.2규칙에 따라
_____년 _____월 _____일 부터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의 기간에 실측된 연간 운항적
탄소집약도지수는 _____
The attained annual operational CII of the ship from ____/____/____ through
____/____/____ was: pursuant to regulations 28.1 and 28.2 of Annex VI of the Convention,
for ships to which regulation 28 applies;²⁾

1) 국제해사기구에서 Resolution. A.1117(30)로 채택된 IMO 선박식별번호계획에 따른 것.
In accordance with the IMO Ship Identification Number Scheme [resolution A.1117(30)].
2) 제27.4규칙, 제27.5규칙 또는 제27.6규칙에 명시된 선박을 양도하는 경우, 협약 부속서 VI의 제28.3규칙에 따라 규칙에
명시된 사항들이 완료되어야 함.
In the event of any transfer of a ship addressed in regulations 27.4, 27.5 or 27.6, these sections should be
completed consistent with regulation 28.3 of MARPOL Annex VI.

(2쪽 중 2쪽)

4. 제28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협약 부속서 VI의 제28규칙에 따라 측정된 이 기간 동안의 연간 선박운항탄소집약도는 ☐A ☐B ☐C ☐D ☐E 등급으로 평가된다.

The annual operational carbon intensity of the ship in this period is rated as ☐A ☐B ☐C ☐D ☐E,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28 of Annex VI to the Convention, for a ship to which regulation 28 applies;²⁾ and

5. 시정조치 계획이 개발되고 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에 반영됨 (제28규칙에 따라 3년 연속 D등급 또는 E등급을 받은 선박)²⁾

A corrective action plan has been developed and included in the SEEMP (for a ship to which regulation 28 applies, rated as D for 3 consecutive years or rated as E)²⁾

이 확인서는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 유효합니다.

This Statement of Compliance is valid until ____/____/____.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 _____

Date ____/____/____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 (인)
(Administrator of the Regional Maritime Affairs & Fisheries Office)

한 국 해 양 교 통 안 전 공 단 이 사 장 (인)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선 급 법 인 의 장 (인)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의7서식] <신설 2020. 12. 24.>

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업체(단체)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14일 |
| 신청인 | 업체명 또는 단체명 | |
| |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업장 전화번호 | 사업장 팩스번호 |
| | 사업장 주소 | |

「해양환경관리법」 제42조제3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업체(단체)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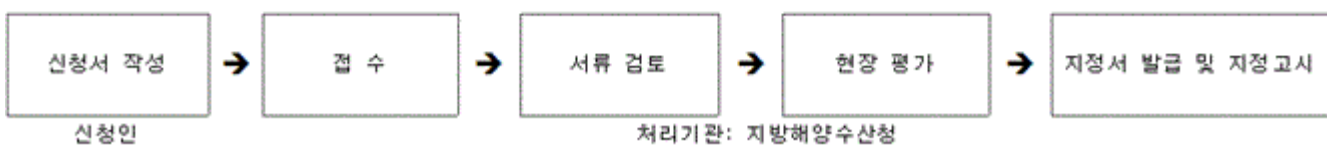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
| 첨부서류 | 1. 오존층파괴물질 회수설비의 보유 현황과 각 회수설비의 제원 및 작동지침서
2. 오존층파괴물질을 저장할 수 있는 수용시설의 보유 현황 |
|------|--|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 80g/㎡)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의8서식] <신설 2020. 12. 24.>

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업체(단체) 지정서

지 정 번 호 : 제 - 호

| | | |
|---------|---------|--|
| 사 업 자 | 상 호 | |
| | 대 표 자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
| 사업장의 주소 | | |
| 비 고 | | |

「해양환경관리법」 제42조제3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이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 직인

[별지 제5호의9서식] <개정 2020. 12. 24.>

(제1쪽)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

OZONE DEPLETING SUBSTANCES RECORD BOOK

(오존층파괴물질을 포함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설비를 보유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부속서 6의 제6.1규칙을 적용받는 선박)
(Each ship subject to regulation 6.1 of MARPOL Annex 6 which has
rechargeable systems that contain ozone depleting substances)

선명:

Name of ship

선박번호 또는 신호부자: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총톤수:

Gross tonnage

기간: 부터 까지

Period: from _____ to _____

210mm × 297mm[인쇄용지](특) 100g/m²]

(제2쪽)

| 일자
Date | 부호(문자)
Code(letter) | 항목(번호)
Item(number) | 작업기록 및 작업책임자의 서명
Record of Operations/Signature of
Officer in Charg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서명:
Signature of officer in charge of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선임된 선박만 해당한다)
(Applicable only to the ship for which the above officer is designated)

선장의 서명:
Signature of Master

고

다음 표에 기재된 작업을 수행한 경우에 그 일자와 해당 작업의 내용을 표시하는 부호 및 번호를 기록하고 필요한 상세사항을 작업기록 및 작업책임자의 서명란에 적을 것

Whenever any of the operation described in the table below take place in the ship, the date, operational code and item number shall be inserted in the appropriate columns and the required particular shall be recorded chronologically in the column of Record of operations/signature of officer in charge.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는 한글로 기록하여야 하며 IAPP증서를 소지하는 선박은 영어로 기록하거나 병기할 것

The entries in the Ozone Depleting Substances Record Book shall be in Korean, and, for ships holding an IAPP Certificate, in English in parallel with Korean or in English only.

오존층파괴물질 기록부는 물질의 질량(kg) 단위로 기록되어야 한다.

Entries in the Ozone Depleting Substances Record Book shall be recorded in terms of mass(kg) of substance.

기록하여야 할 작업의 내용과 그 부호 및 항목

Contents of Work, Code and Item to be Recorded

| 부 호
Code | 항 목
Item | 기록할 사항의 목록
List of Items to be Recorded |
|-------------|-------------|--|
| (A) | |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의 완전한 또는 부분적인 충전
Recharge, full or partial, of equipment containing ozone depleting substances |
| (B) | |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의 수리나 정비
Repair or maintenance of equipment containing ozone depleting substances |
| (C) | | 오존층파괴물질 대기 배출
Discharge of ozone depleting substances to the atmosphere |
| | 1 | 고의적인 배출
Deliberate discharge |
| | 2 | 고의적이지 아닌 배출
Non-deliberate discharge |
| (D) | | 육상 수용시설로의 오존층파괴물질의 배출
Discharge of ozone depleting substances to land-based reception facilities |
| (E) | | 본선에서 오존층파괴물질의 수급
Receive of ozone depleting substances in the ship |

부적합 연료유 사용보고서 (FUEL OIL NON-AVAILABLE REPORT)

Note:

1. 이 보고서는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6, 제18.2.4 규칙에 따라 기국(旗國)과 도착지의 항만당국에 송부되어야 한다. 선박/운항자는 적합한 연료유를 수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급적 선박이 해당 항만/터미널을 출항하기 전에 이 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이 보고서 사본은 최소 36개월 동안 검사의 목적으로 선박에 보관되어야 한다.

1. This report is to be sent to the flag Administration and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in the relevant port(s) of destination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8.2.4 of MARPOL Annex VI. The report shall be sent as soon as it is determined that the ship/operator will be unable to procure compliant fuel oil and preferably before the ship leaves the port/terminal where compliant fuel cannot be obtained. A copy of the FONAR should be kept on board for inspection for at least 36 months.

2. 이 보고서는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6, 제14.1 또는 제14.4 규칙에 명시된 적합한 연료유의 수급이 불가능한 경우의 증거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2. This report should be used to provide evidence if a ship is unable to obtain fuel oil compliant with the provisions stipulated in regulations 14.1 or 14.4 of MARPOL Annex VI

3. 이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선박/운항자는 다음 사항을 주목해야 한다.

3. Before filing a FONAR, the following should be observed by the ship/operator

3.1 이 보고서는 관련 규정의 적용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6 18.2 규칙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도착지 항만당국의 책임이다.

3.1 A fuel oil non-availability report is not an exemption. According to regulation 18.2 of MARPOL Annex VI,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Party of the destination port, through its competent authority, to scrutinize the information provided and take action, as appropriate.

3.2 보고서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반복적으로 제출되는 경우, 관련 당국은 부적합한 연료유의 사용에 대한 추가적인 문서와 입증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선박/운항자는 기항 중에 광범위한 검사 또는 시험을 받을 수 있다.

3.2 In the case of insufficiently supported and/or repeated claims of non-availability, the Party may require additional documentation and substantiation of fuel oil non-availability claims. The ship/operator may also be subject to more extensive inspections or examinations while in port.

3.3 선박/운항자는 연료유 수급계획을 수립할 때 적합한 연료유를 수급하기 위해 항만 내 선석이나 정박지의 변경을 포함하여 물류상태 및/또는 항만정책을 고려할 수도 있다.

3.3 Ships/operators are expected to take into account logistical conditions and/or terminal/port policies when planning bunkering,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having to change berth or anchor within a port or terminal in order to obtain compliant fuel.

3.4 선박/운항자는 가능한 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내에서 필요한 가열 및/또는 그 밖의 처리뿐만 아니라 규제 요건을 초과하지 않는 다른 점도와 다른 황함 유량을 가진 연료유의 사용(그에 따른 다른 윤활유 요구)을 포함한다.

3.4 Ships/operators are expected to prepare as far as reasonably practicable to be able to operate on compliant fuel oils. This could include, but is not limited to, fuel oils with different viscosity and different sulphur content not exceeding regulatory requirements(requiring different lube oils) as well as requiring heating and/or other treatment on board.

1. 선박 상세 / Particulars of ship

1.1 선박명 / Name of ship: _____

1.2 IMO 번호 / IMO number: _____

1.3 기국 / Flag: _____

1.4 선박식별번호 / Ship registration Number: _____

2. 선박 항해 계획의 상세 / Description of ship's voyage plan

2.1 기항국 해역(배출규제해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배출규제해역을 포함한다) 진입 당시 선박의 항해 계획 상세

(가능하다면, 계획서 사본 첨부)

2.1 Provide a description of the ship's voyage plan in place at the time of entry into "country X" waters (and ECA, if applicable) (Attach copy of plan if available)

2.2 운항 상세 / Detail of voyage

1 마지막 출발 항 / Last port of departure

2 기항국의 첫 번째 도착 항 / First port of arrival in "country X"

3 마지막 항만 출항 일자 (일-월-년) / Date of departure from last port (dd-mm-yyyy)

4 기항국의 도착 일자 (일-월-년) / Date of arrival at first "country X"(dd-mm-yyyy)

5 기항국 해역(배출규제해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배출규제해역을 포함한다)을 항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통지를 처음 받은 일자 (일-월-년) / Date ship first received notice that it would be transiting in "country X" waters (and ECA, if applicable) (dd-mm-yyyy)

6 통지 시점의 선박 위치 / Ship's location at the time of notice

(5쪽 중 제3쪽)

7 기항국 해역(배출규제해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배출규제해역을 포함한다)의 진입 예상일(일-월-년) / Date ship operator expects to enter "country X" waters (and ECA, if applicable) (dd-mm-yyyy)

8 기항국 해역(배출규제해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배출규제해역을 포함한다)의 진입 예상시간(시:분 협정세계시) / Time ship operator expects to enter "country X" waters (and ECA, if applicable) (hh:mm UTC):

9 기항국 해역(배출규제해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배출규제해역을 포함한다)의 진출 예상일(일-월-년) / Date ship operator expects to exit "country X" waters (and ECA, if applicable) (dd-mm-yyyy)

10 기항국 해역(배출규제해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배출규제해역을 포함한다)의 진출 예상시간(시:분 협정세계시) / Time ship operator expects to exit "country X" waters (and ECA, if applicable) (hh:mm UTC)

11 기항국 해역(배출규제해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배출규제해역을 포함한다) 내에서 주기관의 예상 운전기간(일) / Projected days ship's main propulsion engines will be in operation within "country X" waters (and ECA, if applicable)

12 기항국 해역(배출규제해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배출규제해역을 포함한다) 진입 및 운항 시 사용하는 연료유 황함유량 / Sulphur content of fuel oil in use when entering and operating in "country X" waters (and ECA, if applicable)

3. 적합 연료유 구매를 시도한 증거 / Evidence of attempts to purchase compliant fuel

3.1 적합한 연료유의 대체원을 찾기 위해 수행한 모든 사항과 적합한 연료유의 이용 불가사유 등을 포함하여, 기항국 해역(배출규제해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배출규제해역을 포함한다) 진입 전 연료유 사용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취한 조치 사항 설명 / Provide a description of actions taken to attempt to achieve compliance prior to entering "country X" waters (and ECA, if applicable), including a description of all attempts that were made to locate alternative sources of compliant fuel oil, and a description of the reason why compliant fuel oil was not available

3.2 계약한 연료유 공급자의 업체명, 전자우편 주소, 주소, 전화번호 및 계약일자(일-월-년) / Contracted Supplier, E-mail address and address, phone number and date of contact (dd-mm-yyyy)

공급자와 연락한 이력(공급자와 연락한 전자우편) 사본을 첨부 / Please attach copies of communication with suppliers (e.g. emails to and from suppliers)

210mm×297mm(백상지 80g/m²)

4. 연료유의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만 / In case of fuel oil supply disruption only

4.1 적합한 연료유를 수급받기로 했던 항만 이름 / Name of port at which ship was scheduled to receive compliant fuel oil

4.2 연료유를 제공하기로 했던 공급자(현재는 사용 불가함을 보고)의 업체명, 전자우편주소 및 연락처 / Name, email address, and phone number of the fuel oil supplier that was scheduled to deliver (and now reporting the non-availability)

5. 운항 제한(해당되는 경우) / Operation constraints, if applicable

5.1 적합한 연료유의 품질로 인해 선박의 운항 또는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부적합한 연료유를 수급한 경우에는 관련 우려 사항이 명확하게 문서화 되어야 한다. / If non-compliant fuel has been bunkered due to concerns that the quality of the compliant fuel available would cause operational or safety problems on board the ships, the concerns should be thoroughly documented

5.2 항만에서 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할 수 없게 한 운항적 제한 사항을 설명 / Describe any operational constraints that prevented use of compliant fuel oil available at port

5.3 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운항적 제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수행하였거나 수행할 예정인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Specify steps taken, or to be taken, to resolve these operational constraints that will enable compliant fuel use

6. 적합 연료유 수급 계획 / Plans to obtain compliant fuel oil

6.1 기항국의 첫 항만에서 적합한 연료유의 수급 가능성과 그 연료의 수급 계획을 설명 / Describe availability of compliant fuel oil at the first port-of-call in "country X", and plans to obtain it

6.2 기항국의 첫 항만에서 적합 연료유의 수급이 불가능한 경우, 수급 가능한 연료유의 최저 황 함유량 또는 차기 항만에서 수급 가능한 연료유의 최저 황 함유량을 열거 / If compliant fuel oil is not available at the first port-of-call in "country X", list the lowest sulphur content of available fuel oil(s) or the lowest sulphur content of available fuel oil at the next port-of-call

7. 이전 부적합 연료유 사용보고서 / Previous Fuel Oil Non-Availability Reports

7.1 선주/운항자가 이전 12개월 내에 기항국에 부적합 연료유 사용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아래와 같이 이전에 제출한 부적합 연료유 사용보고서를 열거하고 부적합 연료유 사용하는 동안 기항한 항만 및 기항 일자 정보를 기입 / If shipowner/operator has submitted a Fuel Oil Non-Availability Report to "country X" in the previous 12 months, list the number of Fuel Oil

(5쪽 중 제5쪽)

Non-Availability Reports previously submitted and provide details on the dates and ports visited while using non-compliant fuel oil, as set out below

보고서 / Report: _____

일자(일-월-년) / Date (dd-mm-yyyy): _____

항만 / Port: _____

연료유 형태 / Type of Fuel: _____

비고 / Comments: _____

8. 선장 및 회사 정보 / Master/Company Information

선장 성명 / Master name: _____

기항지 대리점 / Local agent in "country X": _____

선박운영자 / Ship operator name: _____

선주사 / Shipowner Name: _____

대표자 이름 및 지위 / Name and position of official: _____

전자메일 주소 / Email address: _____

주소(시, 국가, 우편번호) / Address(street, city, country, postal/zip code): _____

전화번호 / Telephone number : _____

선장의 서명 / Signature of Master: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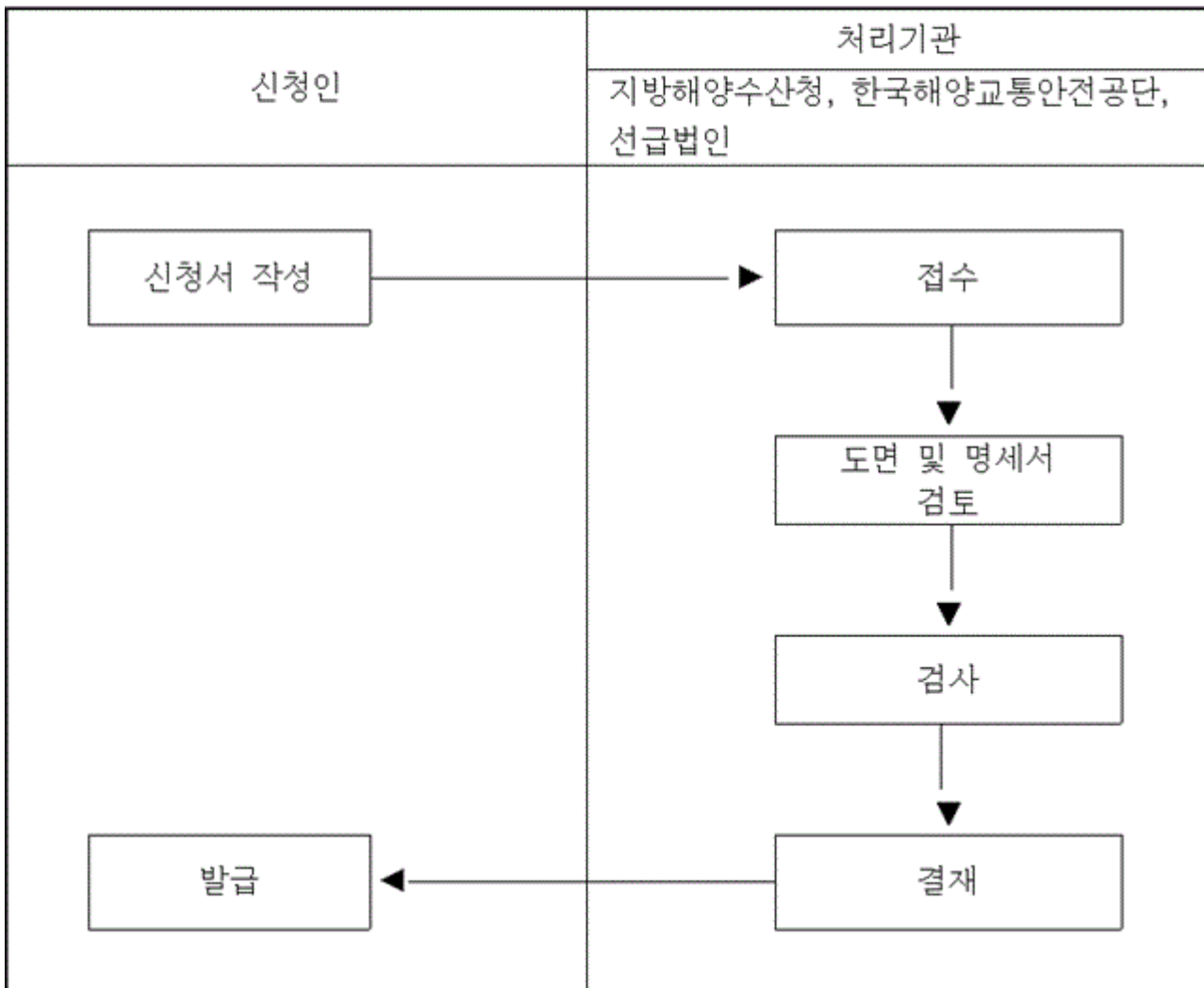
일자(일-월-년) / Date (dd-mm-yyyy): _____

210mm×297mm(백상지 80g/m²)

(뒤쪽)

3. 전체 배치도
4. 제관 계통도(재질 및 치수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5. 중요부품 상세도
6. 전기 계통도
7. 제어 계통도
8. 안전 및 보호장치
9. 성능시험 계획서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1.8.>

증서번호 제 호

유증기배출제어장치안전적합증서

| | | | | |
|---|------------|----|---------------------|--|
| 소유자 | ① 상호 또는 명칭 | | | |
| | ② 성명(대표자) | | ③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 | ④ 주소 | | | |
| ④ 사업장 주소 | | | | |
| | | | | |
| ⑤ 대상물질 | | | | |
| | | | | |
| ⑥ 유증기배출제어장치 | 시설명 | 형식 | 처리용량 | |
| | | | | |
| <p>「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지방해양수산청장 인</p> | | | | |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220g/m²]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1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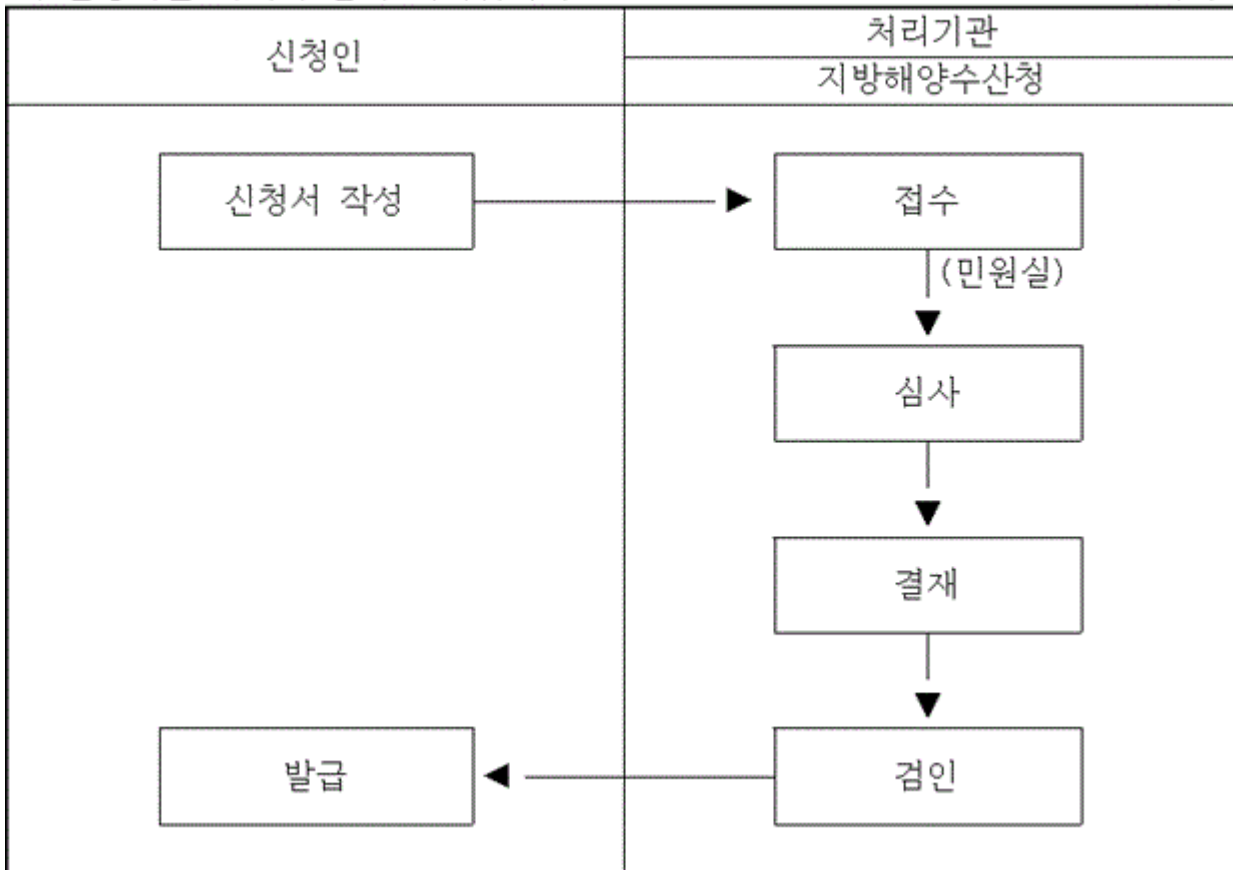
(앞쪽)

| | | | | |
|--|--------------------|--------|----------|-------|
|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 검인신청서 | | | | 처리기간 |
| | | | | 7일 |
| 신청인 | ①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 | | |
| | ② 주소 | (전화:) | | |
| 선박 | ③ 선명 | | ④ 선박번호 | |
| | ⑤ 총톤수 | | ⑥ 국적(선적) | |
| | ⑦ 선박의 종류 | | ⑧ 재화중량톤수 | |
| | ⑨ 주요항로 | | ⑩ 건조연월일 | |
| ⑪ 비고 | | | | |
| <p>「해양환경관리법」 제47조2제1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7조의2제3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의 검인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p> | | | | |
| 구비서류: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 2부 | | | | 수수료 |
| | | | | 3,000 |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 12. 23.>

(앞쪽)

| | | | | |
|---------------|---------------|--------------------|---------------------|-------------|
|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신청서 | | | | 처리기간
25일 |
| 선박소유자 | ① 명칭 또는
성명 | | ②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 | ③ 주소 | (전화번호:) | | |
| ④ 선박 | | ⑤ 용도 | | |
| ⑥ 선적항 | | ⑦ 선박번호 | | |
| ⑧ 총톤수 | | ⑨ 재화중량톤수 | | |
| ⑩ 선박의 길이 | | ⑪ 항행구역 | | |
| ⑫ 검사 희망일자 | | ⑬ 발급 받고자
하는 증서명 | | |
| ⑭ 검사 희망장소 | | | | |
| ⑮비고 | | | | |

위 선박에 대하여 (정기·제1종중간·제2종중간·임시)검사를 받고자
「해양환경관리법」 제49조제1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9조제1항·제40조제1항 및 제41조제2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선급법인의 장 귀하

구비서류

1. 최초의 정기검사 신청의 경우(유조선 및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 외의 선박은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자목부터 카목까지의 서류로 한정합니다)
 - 가. 해양오염방지설비, 선체 및 화물창(이하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이라 합니다)의 제조명세서 및 취급설명서 각 1부
 - 나.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구조 및 배치도면 각 1부
 - 다.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검정합격증명서, 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 및 황산화물 배출적합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 각 1부(해당되는 선박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 라. 선박의 구조도면 1부
 - 마. 화물창의 용량에 관한 계산서 1부
 - 바. 분리평형수탱크의 용량에 관한 계산서 1부
 - 사. 선박평형수용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중 유량계 및 선속계의 성능시험성적서 각 1부(유조선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 아. 화물을 적재할 때의 복원성 및 선박이 손상될 때의 복원성에 관한 자료 1부 (1979년 12월 31일 후에 인도된 선박으로서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과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 자. 질소산화물배출 관련 기록부(질소산화물배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부품의 설정방법 등 기술적 변수에 대한 기록을 말하며, 그 시험보고서를 포함한

수수료

별표 35
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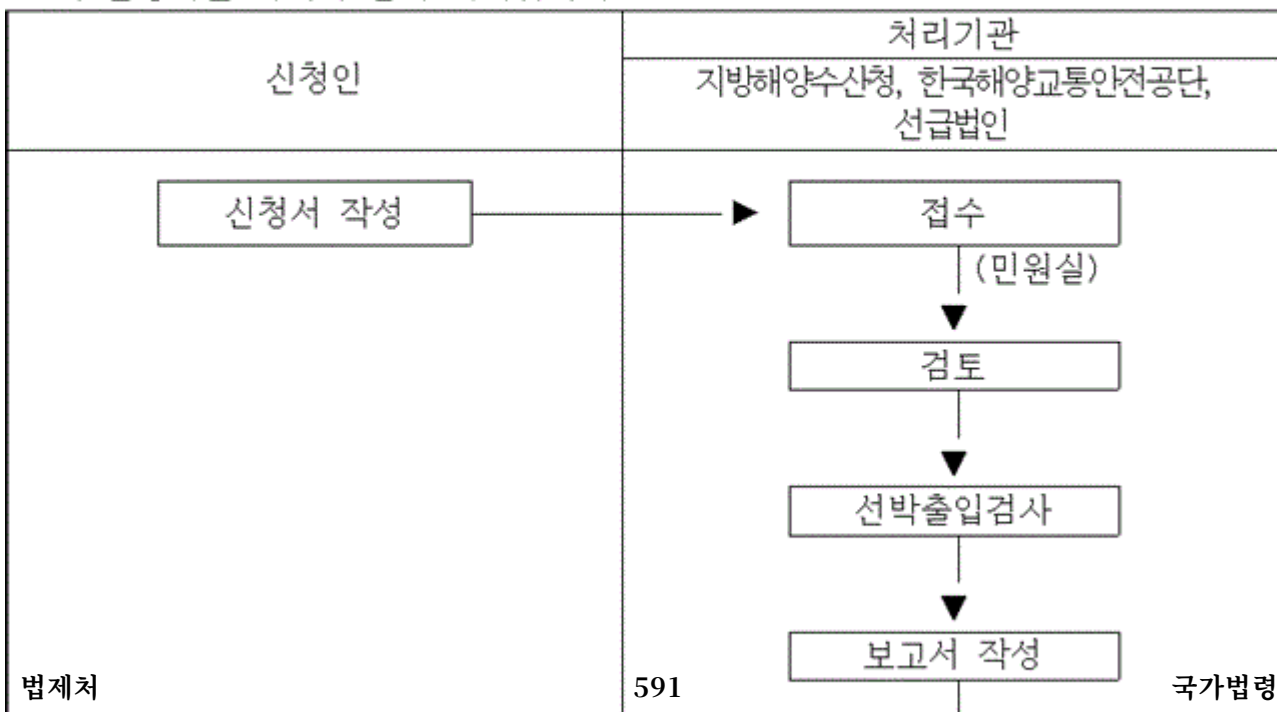
(뒤쪽)

- 차.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기술 매뉴얼(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증명서, 형식 및 운전 특성 등을 기재한 서류를 말합니다) 및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 기록부(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작동 상태 및 유지보수 이력을 기록한 서류를 말합니다) 각 1부(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가 설치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 카. 폐기물 처리 안내표시판(안내표시판 부착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및 폐기물관리계획서 각 1부(해당되는 선박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2. 최초의 정기검사 외의 정기검사·중간검사 및 임시검사 신청의 경우(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류는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이 신설 또는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가.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또는 협약검사증서 1부
- 나.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제조명세서 및 취급설명서와 구조 및 배치도면 각 1부
- 다.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검정합격증명서, 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 및 황산화물 배출 적합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 각 1부(해당되는 선박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 라. 질소산화물배출관련 기록부(질소산화물배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부품의 설정방법 등 기술적 변수에 대한 기록을 말하며, 그 시험보고서를 포함합니다) 1부
- 마.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기술 매뉴얼(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증명서, 형식 및 운전 특성 등을 기재한 서류를 말합니다) 및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 기록부(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작동 상태 및 유지보수 이력을 기록한 서류를 말합니다) 각 1부(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가 설치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 바. 폐기물 처리 안내표시판(안내표시판 부착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및 폐기물관리계획서 각 1부(임시검사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산출내역

| 항목 | 산출근거 | 금액(원) |
|------------|-------------------------------|-------|
| 검사 내용 | 정기·제1종중간·제2종중간·임시
(출입검사 회) | |
| 집행지 외 출장여비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 8. 20.>

(앞쪽)

| | | | |
|--|---|--|---|
| 증서 번호 제 호
Cert. No. | | | |
| 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
Marine Pollution Prevention Certificate | | | |
| 선박 소유자
Owner | ① 명칭 또는 성명
Name | | ②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Registration No. |
| | ③ 주소
Address | | |
| ④ 선명
Name of Ship | | ⑤ 선박 번호
Official Number | |
| | | | |
| ⑥ 선적항
Port of Registry | | ⑦ 용도
Purpose of Ship | |
| | | | |
| ⑧ 총톤수
Gross tonnage | | ⑨ 항행구역
Navigation Area | |
| | | | |
| ⑩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종류
Kind of Marine Pollution Prevention Equipments | | ⑪ 항행상의 조건
Limitation for Navigation | |
| | | | |
| ⑫ 유효기간
Validity of Certificate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This certificate is valid from until | | |
| <p>「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9조제3항에 따라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p> <p>This certificate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9.3 of the Enforcement Decree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Year Month Day</p> <p style="text-align: right;">지방해양수산청장 인
Administrator of the Regional Maritime Affairs & Fisheries Office</p> <p style="text-align: right;">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인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p> <p style="text-align: right;">선급법인의 장 인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p> | | | |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220g/m²]

검사의 시기 및 그 집행의 기록

Records of Anniversary Date & Inspection

(뒤쪽)

| 검사의 시기
Anniversary Date | 검사의 종류
Kind of Inspection | 기사
Remark | 검사일자 및 확인(관인)
Date of Inspection &
Inspection Organization |
|----------------------------|------------------------------|--------------|--|
| | | | 인 |
| | | | 인 |
| | | | 인 |
| | | | 인 |
| | | | 인 |
| | | | 인 |
| | | | 인 |
| | | | 인 |
| | | | 인 |
| | | | 인 |
| | | | 인 |
| | | | 인 |
| | | | 인 |
| | | | 인 |
| | | | 인 |
| | | | 인 |
| | | | 인 |
| | | | 인 |
| | | | 인 |
| | | | 인 |
| | | | 인 |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1. 12. 23.>

(제1쪽)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추록

※ 이 추록은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에 항상 첨부되어야 한다.

기입란 □에 “예” 및 “적용”의 경우는 “V” 표시로, “아니오” 및 “비적용”의 경우는 “-”표시로 기입하고 *표 중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1. 선박의 중요 항목

가. 선 명:

나. 선박번호:

다. 총 톤 수:

재화중량톤수(유조선의 경우):

라. 건조일:

1) *건조계약일/개조계약일:

2) *용골거치일/개조개시일:

3) *인도일/개조완료일:

마. 선박의 용도:

2. 분뇨오염방지설비

가. *분뇨처리장치/분뇨마쇄소독장치/분뇨저장장치□

나. 외부배출관□

3.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등

가. 이 선박은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통합/기름/유해액체물질)를 갖추어 두고 있다.□

나. 이 선박은 선박 대 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를 갖추어 두고 있다.□

다. 이 선박은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를 갖추어 두고 있다.□

4. 기름오염방지설비

가. 기관구역

1) 기름여과장치

가) 기름여과장치(15PPM)□

나) 경보장치 및 자동배출정지장치를 갖춘 기름여과장치(15PPM)□

2) 배출관장치□

3) 선저폐수저장장치□

탱크:

용적: m³

(제2쪽)

4) 누유방지장치 ☐

5) 유성찌꺼기 탱크

| 탱크 | 용적(m³) | 탱크 | 용적(m³) |
|----|--------|----|--------|
| | | | |
| | | | |
| 총계 | | | m³ |

6) 소각설비(*소각기 또는 유화장치) ☐

나. 화물구역(유조선에 한함)

1)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2) 평형수배출관 장치 ☐3) 혼합물탱크 ☐

| 탱크 | 용적(m³) | 탱크 | 용적(m³) |
|----|--------|----|--------|
| | | | |
| | | | |
| 총계 | | | m³ |

4) 분리평형수탱크 ☐

| 탱크 | 용적(m³) | 탱크 | 용적(m³) |
|----|--------|----|--------|
| | | | |
| | | | |
| 총계 | | | m³ |

5) 맑은평형수 탱크 ☐

| 탱크 | 용적(m³) | 탱크 | 용적(m³) |
|----|--------|----|--------|
| | | | |
| | | | |
| 총계 | | | m³ |

6) 화물창원유세정설비 ☐7) 손상복원성 선체구조 ☐8) 이중선체구조기준(*이중선체구조/이중선저구조) ☐

9) 단일선체유조선이 이중선체구조를 갖춘 날 ()년 ()월 ()일

10) 단일선체유조선으로 운항할 수 있는 화물 (중질유)/(중질유 외의 기름)

(제3쪽)

- 11) 펌프룸의 이중선저구조 ☐
- 12) 기름유출(accidental oil outflow performance) 방지구조 ☐
- 13) 씨체스트밸브 및 선내측격리밸브의 구조 ☐
- 다. 연료유탱크의 이중선체구조 ☐

5.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유해액체물질운반선박의 경우만 해당함) ☐
- 가. 예비세정장치 ☐
- 나. 배출관장치 ☐
- 다. 수면하 배출장치 ☐
- 라. 통풍세정장치 ☐
- 마. 스트리핑장치 ☐
- 바.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

6. 대기오염방지설비

- 가. 오존층파괴물질(* 할론/염화불화탄소/염화불화탄화수소) ☐
- 나. 질소산화물 ☐

| 구 분 | 기관 1 | 기관 2 | 기관 3 | 기관 4 | 기관 5 |
|------------|------|------|------|------|------|
| 제조사 및 모델 | | | | | |
| 제조번호 | | | | | |
| 정격출력(kW) | | | | | |
| 정격속도(RPM) | | | | | |
| 주요개조일 | | | | | |
| 기준(Tier) 1 | | | | | |
| 기준(Tier) 2 | | | | | |
| 기준(Tier) 3 | | | | | |
| 기타사항 | | | | | |

- 다. 황산화물 ☐

| 황 함유량 기준 | 연료유 | 황산화물 배출
저감장치 | 대체연료 |
|---------------------------------|-----|-----------------|------|
| 3.5% m/m 이하 | | | |
| 0.5% m/m 이하 | | | |
| 0.1% m/m 이하(배출규
제특별해역 내에 한함) | | | |
| 0.05% m/m 이하 | | | |

(제4쪽)

라. 휘발성유기화합물(유증기수집제어장치) ☐마. 선내소각기(*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각기/일반
형 소각기) ☐

이 추록의 모든 기록은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에서 발행하다.

지방해양수산청장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선급법인의 장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220g/m²]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2014.12.29.](#)>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2014.12.29.](#)>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2014.12.29.](#)>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2014.12.29.](#)>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2014.12.29.](#)>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9. 8.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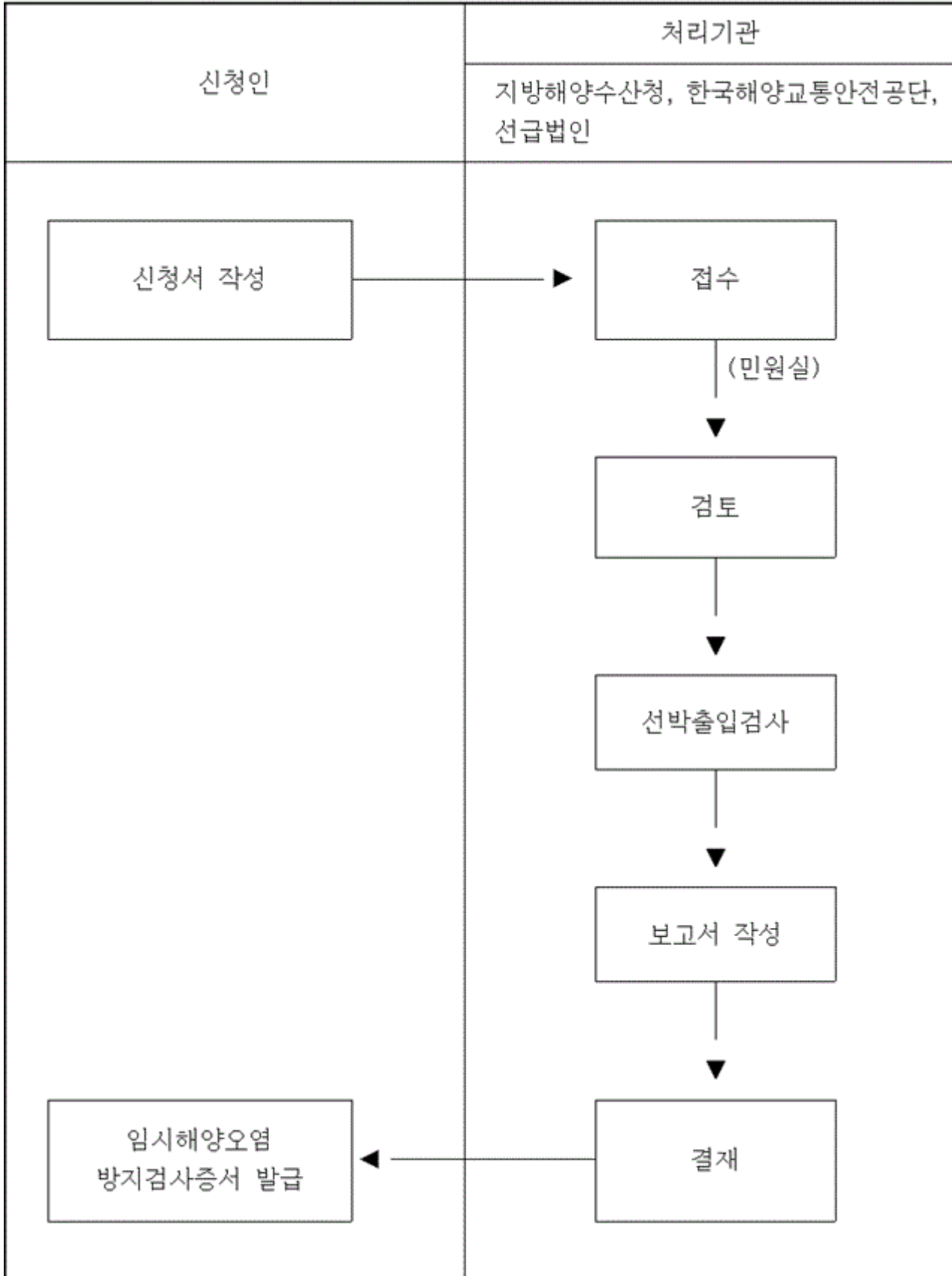
(앞쪽)

| | | | | |
|---|---------------|-----------|---------------------|---------------------|
| 임시항해검사신청서 | | | | 처리기간
3 일 |
| 선박소유자 | ① 명칭 또는
성명 | | ②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 | ③ 주소 | (전화번호 :) | | |
| ④ 선명 | | | ⑤ 총톤수 | |
| ⑥ 선박번호 | | | ⑦ 선박의 길이 | |
| ⑧ 임시항해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짜 | | | | |
| ⑨ 임시항해검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 | | | | |
| ⑩ 임시항해를 하고자 하는 기간,
항로 및 이유 | | | | |
| ⑪ 최근 1년 동안에 임시항해검사를
받고 임시항해한 일수 | | | | |
| ⑫ 비고 | | | | |
| <p>위 선박에 대하여 임시항해검사를 받고자 「해양환경관리법」 제52조제1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선급법인의 장 귀하</p> | | | | |
| 구비서류: 해양오염방지설비의 구조 및 배치도면 1부 | | | | 수수료
별표 35에
따름 |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9. 8. 20.>

| | | | |
|--|--------------------|---------------------------|---|
| 증서 번호 제 호
Cert. No. | | | |
| 임시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
Temporary Marine Pollution Prevention Certificate | | | |
| 선박 소유자
Owner | ① 명칭 또는 성명
Name | | ②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Registration No. |
| | ③ 주소
Address | | |
| ④ 선명
Name of Ship | | ⑤ 용도
Purpose of Ship | |
| ⑥ 총톤수
Gross tonnage | | ⑦ 선박번호
Official Number | |
| ⑧ 항로
Route | | | |
| ⑨ 유효기간
Validity of Certificate | | | |
| ⑩ 항행상의
조건
The Condition
of Navigation | | |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3조제3항에 따라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43.3 of the Enforcement Decree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Year Month Day

지방해양수산청장 인
 Administrator of the Regional Maritime Affairs & Fisheries Office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인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선급법인의 장 인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

210mm×297mm[보존용지(1종) 220g/m²]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9. 8. 20.>

(앞쪽)

| | | | | |
|---|---------------|-----------|---------------------|-------------------------|
| 방오시스템검사신청서 | | | | 처리기간 |
| | | | | 14 일 |
| 선박소유자 | ① 명칭 또는
성명 | | ②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 | ③ 주소 | (전화번호 :) | | |
| ④ 선박 | | ⑤ 용도 | | |
| ⑥ 선적항 | | ⑦ 선박번호 | | |
| ⑧ 총톤수 | | ⑨ 재화중량톤수 | | |
| ⑩ 선박의 길이 | | ⑪ 항행구역 | | |
| ⑫ 수검 희망일자 | | | | |
| ⑭ 수검 희망장소 | | | | |
| ⑮ 비고 | | | | |
| <p>위 선박에 대하여 (방오시스템·임시방오시스템)검사를 받고자 「해양환경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4조 제2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p> <p>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선급법인의 장 귀하 </p> | | | | |
| 구비서류
1. 방오시스템 형식승인증서
2. 방오시스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또는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료
3. 방오시스템의 구성성분과 액체화학품분류번호(CAS No.)
4. 방오시스템 검사증서(임시방오시스템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 | | 수수료

별표 35에
따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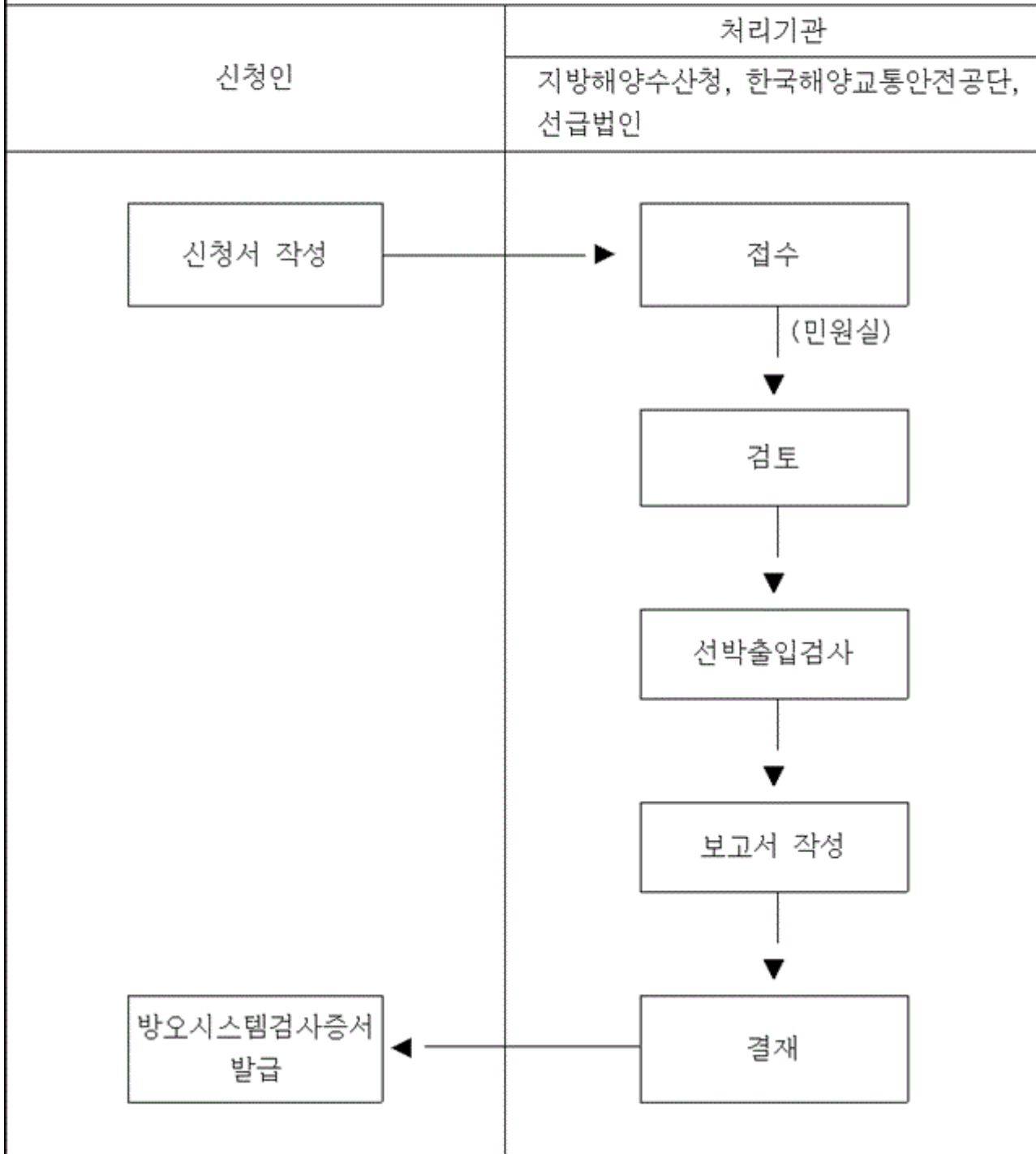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쪽)

수수료 산출내역

| 항목 | 산출근거 | 금액(원) |
|------------|---------------------------------|-------|
| 검사내용 | 방오시스템검사 · 임시방오시스템검사
(출입검사 회) | |
| 집행지 외 출장여비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3. 9. 1.>

(4쪽 중 1쪽)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_____

방오시스템검사증서

INTERNATIONAL ANTI-FOULING SYSTEM CERTIFICATE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선박유해방오시스템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_____
_____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Harmful Anti-Fouling Systems on Ships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y _____

증서가 이전에 발행된 때에는 이 증서가 _____년____월____일에 발행된 증서를 대체한다.

When a Certificate has been previously issued, this Certificate replaces the certificate dated_____.

| 선명
Name of Ship | 선박번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 선적항
Port of Registry | 총톤수
Gross Tonnage | IMO 번호 ¹⁾
IMO Number ¹⁾ |
|--------------------|--|-------------------------|----------------------|--|
| | | | | |

살생물제로 사용되는 유기주석화합물을 이 선박의 제조 중 또는 제조 후에 적용한 적이 없다.

Organotin compounds which act as biocides has not been applied during or after construction of this ship ☐

살생물제로 작용하는 유기주석화합물을 이전에 이 선박에 적용한 적이 있었으나, _____(해당 회사명을 기재)에 의하여 _____년____월____일(일자) 제거되었다.

Organotin compounds which act as biocides has been applied on this ship previously, but has been removed by _____(insert name of the facility) on _____(date) ☐

살생물제로 작용하는 유기주석화합물을 이전에 이 선박에 적용한 적이 있었으나, _____(해당 회사명을 기재)에 의하여 _____년____월____일(일자) 밀봉도장으로 덮어 씌웠다.

Organotin compounds which act as biocides has been applied on this ship previously, but has been covered with a sealer coat applied by _____(insert name of the facility) on _____(date) ☐

시부트린을 이 선박의 제조 중 또는 제조 후에 적용한 적이 없다.

Cybutryne has not been applied during or after construction of this ship ☐

시부트린을 이전에 이 선박에 적용한 적이 있으나 _____, (해당 회사명을 기재)에 의하여 _____년____월____일(일자) 제거되었다.

Cybutryne has been applied on this ship previously, but has been removed by _____(insert name of the facility) on _____(date) ☐

시부트린을 이전에 이 선박에 적용한 적이 있으나 _____, (해당 회사명을 기재)에 의하여 _____년____월____일(일자) 밀봉도장으로 덮어 씌웠다.

Cybutryne has been applied on this ship previously, but has been covered with a sealer coat applied by _____(insert name of the facility) on _____(date) ☐

1) IMO에서 Res. A.600(15)로 채택된 IMO 선박식별번호계획에 따른 것

In accordance with IMO ship identification number scheme adopted by the Organization by resolution A.600(15).

(4쪽 중 2쪽)

시부트린을 이전에 이 선박에 적용한 적이 있었으나,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선체, 외부 부품 또는 표면의 외부 코팅층에 적용되지 않았다.

Cybutryne has been applied on this ship previously, but is not in the external coating layer of the hull or external part or surfaces on 1 January 2023 ☐

시부트린을 이 선박에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적용하였으나, _____년 _____월 _____일(날짜)²⁾전에 제거되거나 밀봉도장으로 덮어져야 한다.

Cybutryne was applied on this ship prior to 1 January 2023, but must be removed or covered with a sealer coat prior to _____(date)²⁾ ☐

이 증서는 다음 사항을 증명한다:

THIS IS TO CERTIFY THAT:

1. 이 선박은 협약 부속서 4 제 1 규칙에 의해서 검사를 받았음.

1. the ship has been surveyed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 of Annex 4 to the Convention;

2. 검사 결과 선박 방오시스템이 협약 부속서 1의 해당 요건에 적합함.

2. the survey shows that the anti-fouling system on the ship complies with the applicable requirements of Annex 1 to the Convention.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_____ on the _____ day of _____.

지방해양수산청장 ☐

(Administrator of the Regional Maritime Affairs & Fisheries Office)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선급법인의 장 ☐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

이 증서 발급을 위한 검사 완료일: _____

Date of completion of the survey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issued: _____

2) 부속서 1 에 언급된 이행 만기일

Date of expiration of any implementation period specified in Annex 1.

(제3쪽)

방오시스템 기록부
RECORD OF ANTI-FOULING SYSTEMS

이 기록부는 국제방오시스템증서에 영구적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This Record shall be permanently attached to the International Anti-Fouling System Certificate.

선박의 명세

Particulars of ship

선명:

Name of ship: _____

선박번호 또는 신호부자: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_____

IMO 번호:

IMO number: _____

적용된 방오시스템의 세부 사항

Details of anti-fouling system(s) applied

사용된 방오시스템의 형식:

Type(s) of anti-fouling system(s) used _____

방오시스템의 적용일자:

Date(s) of application of anti-fouling system(s) _____

적용한 장소/설비 및 회사명:

Name(s) of company(ies) and facility(ies)/location(s) where applied _____

방오시스템 제조자명:

Name(s) of anti-fouling system manufacturer(s) _____

방오시스템 명칭과 색상:

Name(s) and colour(s) and colour(s) of anti-fouling system(s) _____

활성 성분과 CAS 번호:

Active ingredient(s) and their Chemical Abstract Services Registry Number(s) (CAS number(s)) _____

적용한 경우, 필러코트의 형식:

Type(s) of sealer coat, if applicable _____

적용한 경우, 적용된 필러코트명과 색상:

Name(s) and colour(s) of sealer coat applied, if applicable _____

필러코트의 적용일:

Date of application of sealer coat _____

이 기록은 모든 점에서 틀림없음을 증명한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is Record is correct in all respects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_____ on the _____ day of _____.

지방해양수산청장 

(Administrator of the Regional Maritime Affairs & Fisheries Office)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선급법인의 장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

(제4쪽)

기록의 이서⁴⁾
Endorsement of the Records⁴⁾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 부속서 4의 제 1(1)(b) 규칙에 의하여 요구되는 검사 결과 협약의 관련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한다.

THIS IS TO CERTIFY that a survey required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1)(b) of Annex 4 to the Convention found that the ship was in compliance with the Convention

적용된 방오시스템의 세부 사항

Details of anti-fouling system(s) applied

사용된 방오시스템의 형식:

Type(s) of anti-fouling system(s) used _____

방오시스템의 적용일자:

Date(s) of application of anti-fouling system(s) _____

적용한 장소/설비 및 회사명:

Name(s) of company(ies) and facility(ies) location(s) there applied

방오시스템 제조자명:

Name(s) of anti-fouling system(s) manufacturer(s)

방오시스템 명칭과 색상:

Name(s) and colour(s) of anti-fouling system(s) _____

활성 성분과 CAS 번호:

Active ingredient(s) and their Chemical Abstract Services Registry Number(s)(CAS number(s))

적용한 경우, 씰러코트의 형식:

Type(s) of sealer coat, if applicable

적용한 경우, 적용된 씰러코트명과 색상:

Name(s) and colour(s) of sealer coat applied, if applicable

씰러코트의 적용일:

Date of application of sealer coat

서명:

Signed: _____

(기록 발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의 서명)

(Signature of authorized official issuing the Record)

장소:

Place: _____

날짜:⁶⁾

Date⁶⁾: _____

(권한자의 인장)

(Seal or stamp of the authority)

5) 기록부의 이 페이지는 주관청이 필요하다고 여기면 복사하여 사용하고, 기록부에 첨부하도록 한다.

This page of record shall be reproduced and added to the Record as considered necessary by the Administration

6) 이서를 하기 위한 검사 종료일

Date of completion of the survey on which this endorsement is made.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9. 8. 20.>

예비검사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수검요청일 부터
25일 이내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전화번호) | | |

질소산화물 배출방지기관 또는 황산화물용 배기가스 정화장치의 내용

| 품명 | 규격 | 형식 | 수량 | 제조번호 | 비고 |
|----|----|----|----|------|----|
| | | | | | |

| | | | | | |
|----------|--|---|---|---|-------|
| 요청
내역 | 수검 요청일 | 년 | 월 | 일 | 수검 장소 |
| | 신청 구분 []제조 []개조 []수리·정비 []수입
비고 | | | | |

「해양환경관리법」 제54조제1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질소산화물 배출방지기관 또는 황산화물용 배기가스 정화장치에 대한 예비검사를 받기 위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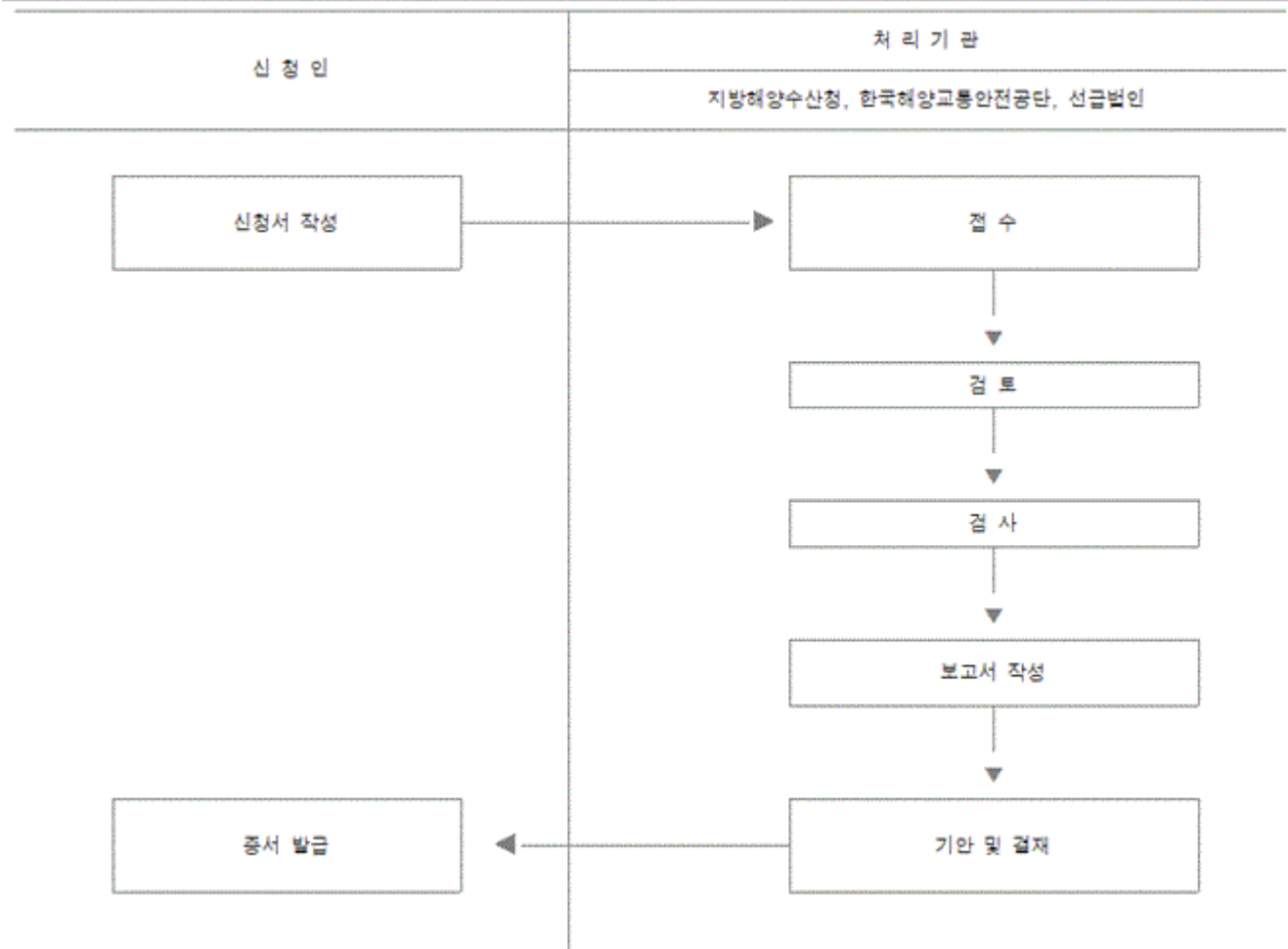
지방해양수산청장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선급법인의 장

| | | |
|-------|-------|---|
| 붙임 서류 | 취록 참조 | 수수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검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수수료 기준에 따름) |
|-------|-------|---|

(뒤쪽)

| | |
|-------|---|
| 붙임 서류 | <p><질소산화물 배출방지기관의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질소산화물 배출방지기관의 명세서 1부 2. 질소산화물 배출방지기관의 구조 도면 1부 3. 표본기관(질소산화물 배출방지기관의 표본이 되는 기관을 말합니다)이 적용되는 질소산화물 배출방지기관의 범위 및 선정기준 각 1부 4. 질소산화물 배출관련 기록부 1부 5. 외국정부가 승인 및 발급한 질소산화물 배출관련 기록부 및 검사증서(수입하는 질소산화물 배출방지기관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검사한 경우로서 관련 검사사항을 면제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p><황산화물용 배기가스 정화장치의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황산화물용 배기가스 정화장치의 명세서 1부 2. 황산화물용 배기가스 정화장치의 구조 도면 1부 3. 황산화물용 배기가스 정화장치의 작동설명서, 기술 매뉴얼 및 선상 모니터링 매뉴얼(배기가스의 황산화물 수치 감지기의 설치 위치 및 보수 및 보정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 말합니다) 각 1부 4. 황산화물 배출 적합 계획서(연료유 연소장치의 목록과 배출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장치가 운전됨을 기재한 서류를 말합니다) 1부 5. 황산화물용 배기가스 정화장치 기록부 1부 6. 외국정부가 승인 및 발급한 황산화물 배출적합증서(수입하는 황산화물용 배기가스 정화장치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검사한 경우로서 관련 검사사항을 면제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처리절차



210mm × 297mm[백상지(80g/㎡)]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9. 8. 20.>

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

증서번호 제 호

| | | | | |
|-----------|-------------|--|-------------------|--|
| 제조자 | 명칭 또는
성명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소 | | | |
| 기관제조사 | | | 모델번호 | |
| 기관제조번호 | | | 시험주기 | |
| 정격출력 및 속도 | | | 기관승인번호 | |

「해양환경관리법」 제54조제2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4항에 따라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선급법인의 장

직인

210mm × 297mm[백상지 120g/m²]

(뒤쪽)

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 추록
구조·질소산화물배출관련 기록 및 인증방법의 기록

1. 기관의 중요 항목

- 가. 제조자의 명칭 및 주소: _____
- 나. 기관 제조일: _____
- 다. 기관 제조지: _____
- 라. 최초 검사장소: _____
- 마. 최초 검사완료일: _____
- 바. 기관의 형식 및 모델번호: _____
- 사. 기관 제조번호: _____
- 아. 만약 적용한다면, 이 기관은 []기관패밀리, []기관그룹과 동등한 조건으로 생산된 []표본기관 또는 []소속기관이다.
- 자. 시험주기: _____
- 차. 정격출력 및 회전수: _____
- 카. 기관승인번호: _____
- 타. 시험연료유 사양: _____
- 파. 질소산화물 감소장치에 지정된 승인번호(설치된 경우): _____
- 하. 적용되는 질소산화물 배출 제한 값(g/kWh): _____
- 거. 기관의 실제 측정된 질소산화물 배출 값(g/kWh): _____
- 너. 이 기관은 []기준 1, []기준 2, []기준 3의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한다.

2. 질소산화물배출관련 기록

- 가. 기록의 식별/승인 번호: _____
- 나. 기록의 승인일: _____
- 다. 질소산화물배출관련 기록은 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이고, 기관의 일생동안 기관과 함께 유지되어야 하며, 선박의 선내에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3. 기관변수 검사를 위한 선상 질소산화물 인증절차의 상세

- 가. 선상 질소산화물 인증절차의 식별/승인 번호: _____
- 나. 선상 질소산화물 인증절차의 승인일: _____
- 다. 선상 질소산화물 인증절차에 대한 상세는 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이고, 기관의 일생동안 기관과 함께 유지되어야 하며, 선박의 선내에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이 추록의 모든 기록은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_____ 에서 발행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선급법인의 장

직인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개정 2019. 8. 20.>

증서번호 제 _____ 호
Cert. No. _____

황산화물 배출적합증서 SO_x EMISSION COMPLIANCE CERTIFICATE

배기가스정화장치에 대한 개별승인 증서 CERTIFICATE OF UNIT APPROVAL FOR EXHAUST GAS CLEANING SYSTEMS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1973/78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개정하기 위한 결의서 MEPC.176(58)에 따라 개정된 1997년 의정서에 따라 대한민국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Protocol of 1997, as amended by resolution MEPC.176(58) in 2008, to ame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1973, as modified by the Protocol of 1978 related thereto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by _____.

이 증서는 결의서 MEPC.259(68)로 채택된 배기가스정화장치에 대한 2015 지침서의 Scheme A에 따른 요구조건에 따라 아래의 장비가 검사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exhaust gas cleaning (EGC) unit listed below has been survey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specifications contained under Scheme A in the 2015 Guidelines for exhaust gas cleaning systems adopted by resolution MEPC.259(68).

이 증서는 아래의 배기가스정화장치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only for the EGC unit referred to below:

| 제조사
Unit Manufacturer | 모델 / 형식
Model/ type | 제조번호
Serial number | 배기가스정화장치 및 기술 매뉴얼의 승인번호
EGC System Unit and Technical Manual approval number |
|--------------------------|------------------------|-----------------------|---|
| | | | |

이 증서의 사본과 배기가스정화장치 기술 매뉴얼은 배기가스정화장치가 설치된 선박에 항상 비치되어야 합니다.

A copy of this Certificate, together with the EGC System Technical Manual, shall be carried on board the ship fitted with this EGC System unit at all times.

이 증서는 MARPOL 부속서 VI의 5장 및 지침서의 4.2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에 따라 선박에 설치된 배기가스정화장치의 수명 동안 유효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for the life of the EGC System unit, subject to surveys in accordance with section 4.2 of the guidelines and regulation 5 of MARPOL Annex VI, installed in ships under the authority of this Government.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_____ on the _____ day of _____.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 (인)
(Administrator of the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한 국 해 양 교 통 안 전 공 단 이 사 장 (인)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선 급 법 인 의 장 (인)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

210mm × 297mm [백상지 (80g/m²)]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21호의3서식] <개정 2019. 8. 20.>

에너지효율검사 신청서

(앞쪽)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건조기간(개조기간)
+ 25일 |
| 소유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 주 소 | | |
| | (전화번호 :)
(전송 :) (전자우편 :) | | |
| 선 박 | 선명 | 선박번호 | |
| | 선적항 | 항해구역 | |
| | 선박의 종류 | | |
| | 총톤수 | 톤 | 재화중량톤수 |
| | 선박의 길이 | 미터 | 추진기관 |
| | 수검요청일자 | | 수검장소 |
| 비 고 | | | |

위 선박에 대하여 에너지효율검사를 받고자 「해양환경관리법」 제54조의2제1항,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선급법인의 장

(주) 신청사유(건조, 개조 등)를 '비고'란에 적으십시오.

| | | |
|------|--|-----|
| 첨부서류 | 1.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
가. 선박의 에너지효율 관련 기록부 1부
나. 에너지효율검사증서(소지하고 있는 선박만 해당함)
※ 구비서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28의2를 참조하시기 | 수수료 |
|------|--|-----|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21호의4서식] <개정 2025. 8. 12.>

(5쪽 중 제1쪽)

증서번호 제 _____ 호
Cert. No. _____

에너지효율검사증서 INTERNATIONAL ENERGY EFFICIENCY CERTIFICATE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1978년 의정서 및 1997년 의정서에 따라 개정된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대한민국정부의 권한으로 _____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Protocol of 1997, as amended, to ame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by Ships, 1973, as modified by the Protocol of 1978 related thereto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vention”)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by _____.

선박의 명세
Particulars of ship

| 선 명
Name of Ship | 선박번호 또는
호출부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 선 적 항
Port of Registry | 총톤수
Gross Tonnage | IMO 번호*
IMO Number* |
|---------------------|---|---------------------------|----------------------|------------------------|
| | | | | |

이 증서는 다음 사항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 이 선박은 협약 부속서 VI의 제5.4규칙에 따라 검사되었음.
That the ship has been surveyed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5.4 of Annex VI to the Convention, and
- 검사의 결과, 이 선박은 제22규칙, 제23규칙, 제24규칙, 제25규칙 및 제26규칙의 해당 요건에 적합함.
That the survey shows that the ship complies with the applicable requirements in regulation 22, 23, 24, 25 and 26.

이 증서 발급을 위한 검사완료일:

Completion date of the survey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_____ on the _____ day of _____.

해양수산부장관 (인)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인)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선급법인 의장 (인)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

* IMO 선박식별번호계획에 따른 것 [결의서 A.1117(30)].
In accordance with IMO ship identification number scheme (resolution A.1117(30)).

에너지효율검사증서추록
SUPPLEMENT TO THE INTERNATIONAL ENERGY EFFICIENCY CERTIFICATE (IEE CERTIFICATE)

에너지효율과 관련된 구조의 기록부
RECORD OF CONSTRUCTION RELATING TO ENERGY EFFICIENCY

주 :

Note :

1. 이 기록부는 에너지효율검사증서에 영구적으로 첨부되어야 한다. 에너지효율검사증서는 언제나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This Record shall be permanently attached to the IEE Certificate. The IEE Certificate shall be available on board the ship at all times.
2. 이 기록부는 적어도 영어, 프랑스어 또는 스페인어 중 하나로 작성되어야 한다. 만일 발행하는 당사국의 공식 언어가 사용되는 경우, 논쟁이 있거나 불일치한 경우가 발생하면 이 공식 언어가 우선한다.
 The Record shall be at least in English, French or Spanish. If an official language of the issuing Party is also used, this shall prevail in case of a dispute or discrepancy.
3. 네모 빈칸에는 답이 “예” 와 “적용” 인 경우에는 “X” 로, “아니요” 와 “비적용” 의 경우에는 “-” 으로 적절히 표기하여야 한다.
 Entries in boxes shall be made by inserting either: a cross (x) for the answers “yes” and “applicable” ; or a dash (-) for the answers “no” and “not applicable” , as appropriate.
4.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하면, 이 기록부에서 규칙이란 협약 부속서 VI의 규칙을 말하며, 결의서나 회람이란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된 것을 말한다.
 Unless otherwise stated, regulations mentioned in this Record refer to regulations in Annex VI of the Convention, and resolutions or circulars refer to those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1. 선박의 중요 항목:
 PARTICULARS OF SHIP:

- 1.1 선명:
 Name of ship:
- 1.2 IMO 번호:
 IMO number:
- 1.3 건조 계약일:
 Date of building contract:
- 1.4 주요개조일(적용되는 경우):
 Date of major conversion(if applicable):
- 1.5 총톤수:
 Gross tonnage:
- 1.6 재화중량:
 Deadweight:
- 1.7 선박의 종류*:
 Type of ship

* 제1규칙에 규정된 정의에 따라 선박의 종류를 기입할 것. 제2규칙에서 정의한 선박의 종류들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엄격한 요구 에너지효율지수를 가진 선박의 종류를 적용해야 한다. 선박이 제2규칙에 정의된 선박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2규칙에서 정의한 선박 종류 이외의 선박”이라고 기입한다.

Insert ship type in accordance with definitions specified in regulation 2. Ships falling into more than one of the ship types defined in regulation 2 should be considered as being the ship type with the most stringent (the lowest) required EEDI. If ship does not fall into the ship types defined in regulation 2, insert “Ship other than any of the ship type defined in regulation 2”.

2. 추진 시스템의 유형 TYPE OF PROPULSION SYSTEM

- 2.1 디젤 추진 ☐
 Diesel propulsion ☐
 2.2 디젤-전기 추진 ☐
 Diesel-electric propulsion ☐
 2.3 터빈 추진 ☐
 Turbine propulsion ☐
 2.4 하이브리드 추진 ☐
 Hybrid propulsion ☐
 2.5 기타 추진 시스템 ☐
 Propulsion system other than any of the above ☐

3.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EEDI) ATTAINED 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EEDI)

- 3.1 제22.1규칙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는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 과정을 보여주는 기술 파일에 포함된 정보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
 The Attained EEDI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22.1 is calculated based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technical file which also shows the process of calculating the Attained EEDI: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는: _____ g-CO₂/tonne-mile 이다.
 The Attained EEDI is: _____ g-CO₂/tonne-mile

- 3.2 다음의 이유로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를 계산하지 않는다:

The attained EEDI is not calculated as:

- 3.2.1 해당 선박이 제22.18규칙에 정의된 신선이 아니므로 제22.1규칙에 따라 제외된다.
 the ship is exempt under regulation 22.1 as it is not a new ship as defined in regulation 22.18 ☐
 3.2.2 추진시스템의 종류가 제19.3규칙에 따라 제외된다.
 the type of propulsion system is exempt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9.3 ☐
 3.2.3 제22규칙의 요구사항이 제19.4규칙에 따라 해당 선박의 주관청에 의해 제외된다.
 the requirement of regulation 22 is waived by the ship's Administration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9.4 ☐
 3.2.4 선박의 종류가 제22.1규칙에 따라 제외된다.
 the type of ship is exempt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22.1 ☐

4.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REQUIRED EEDI

- 4.1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은: _____ g-CO₂/tonne-mile 이다.
 Required EEDI is: _____ g-CO₂/tonne-mile

- 4.2 다음의 이유로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을 적용하지 않는다:

The required EEDI is not applicable, as:

- 4.2.1 해당 선박이 제22.18규칙에 정의된 신선이 아니므로 제24.1규칙에 따라 제외된다.
 the ship is exempt under regulation 24.1 as it is not a new ship as defined in regulation 22.18 ☐
 4.2.2 추진시스템의 종류가 제19.3규칙에 따라 제외된다.
 the type of propulsion system is exempt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9.3 ☐
 4.2.3 제24규칙의 요구사항이 제19.4규칙에 따라 해당 선박의 주관청에 의해 제외된다.
 the requirement of regulation 24 is waived by the ship's Administration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9.4 ☐

(5쪽 중 제4쪽)

4.2.4 선박의 종류가 제24.1규칙에 따라 제외된다.

the type of ship is exempt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24.1 ☐

4.2.5 선박의 용량이 제24.2규칙의 표 1의 최소 용량 기준 미만이다.

the ship's capacity is below the minimum capacity threshold in Table 1 of regulation 24.2 ☐

5.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

Attained Energy Efficiency Existing Ship Index (EEXI)

5.1 제23.1규칙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지수는 기구에 의해 개발된 지침서*에 따라 계산된다.

The attained EEXI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23.1 is calculated taking into account the guidelines developed by the Organization ☐선박에너지효율지수는: gram-CO₂/tonne-mile 이다.The attained EEXI isgrams-CO₂/tonne-mile

5.2 다음의 이유로 선박에너지효율지수를 계산하지 않는다:

The attained EEXI is not calculated, as:

5.2.1 추진시스템의 종류가 제19.3규칙에 따라 제외된다.

the type of propulsion system is exempt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9.3 ☐

5.2.2 선박의 종류가 제23.1규칙에 따라 제외된다.

the type of ship is exempt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23.1 ☐

6.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

Required EEXI

6.1 제25규칙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은: _____ g-CO₂/tonne-mile 이다.The required EEXI is:grams-CO₂/tonne-mile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25

6.2 다음의 이유로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을 적용하지 않는다:

The required EEXI is not applicable, as:

6.2.1 추진시스템의 종류가 제19규칙에 따라 제외된다.

the type of propulsion system is exempt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9 ☐

6.2.2 선박의 종류가 제25.1규칙에 따라 제외된다.

the type of ship is exempt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25.1 ☐

6.2.3 선박의 용량이 제25.1규칙의 표 3의 최소 용량 기준 미만이다.

the ship's capacity is below the minimum capacity threshold in table 3 of regulation 25.1 ☐

7.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SHIP ENERGY EFFICIENCY MANAGEMENT PLAN

7.1 이 선박은 제26규칙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SEEMP)가 제공된다.

The ship is provided with a Ship Energy Efficiency Management Plan (SEEMP) in compliance with regulation 26 ☐

* 선박에너지효율지수 계산에 관한 2022 지침서 참조[결의서, MEPC.350(78)]

In Refer to the 2022 Guidelines on the method of calculation of the attained Energy Efficiency Existing Ship Index (EEXI)[resolution MEPC.350(78)]

(5쪽 중 제5쪽)

8.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기술 파일
EEDI TECHNICAL FILE

- 8.1 제22.1규칙에서 요구되는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에 대한 기술 파일은 에너지효율증서와 함께 유지되어야 한다.

The IEE Certificate is accompanied by the EEDI technical file in compliance with regulation 22.1 ☐

8.1.1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기술 파일 식별/검증 번호

The EEDI technical file identification/verification number

8.1.2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기술 파일 검증일

The EEDI technical file verification date

9. 선박에너지효율지수 기술 파일
EEXI TECHNICAL FILE

- 9.1 제23.1규칙에서 요구되는 선박에너지효율지수에 대한 기술 파일은 에너지효율증서와 함께 유지되어야 한다.

The IEE Certificate is accompanied by the EEXI technical file in compliance with regulation 23.1 ☐

9.1.1 선박에너지효율지수 기술 파일 식별/검증 번호

The EEXI technical file identification/verification number

9.1.2 선박에너지효율지수 기술 파일 검증일

The EEXI technical file verification date

- 9.2 선박에너지효율지수 값의 대안으로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값이 사용되기 때문에, 선박에너지효율지수에 대한 기술파일은 에너지효율증서와 함께 유지되지 않는다.

The IEE Certificate is not accompanied by the EEXI technical file as the attained EEDI is used as an alternative to the attained EEXI ☐

이 기록은 모든 점에서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is record is correct in all respects.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_____ on the _____ day of _____.

해양수산부장관 (인)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인)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선급법인의 장 (인)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_____



국제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
INTERNATIONAL CERTIFICATE OF FITNESS FOR THE CARRIAGE
OF DANGEROUS CHEMICALS IN BULK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국제위험화학품산적운반선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규칙」 [(해사안전위원회 결의 176(79) 및 해사 환경보호위원회 결의 119(52)를 말하며,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de for the Construction and Equipment of Ships Carrying Dangerous Chemicals in Bulk [resolution MSC. 176(79) and MEPC. 119(52)]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y _____

| 선명
Name of Ship | 선박번호 또는 호출부
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 선적항
Port of Registry | 총톤수
Gross Tonnage | 선형
Ship Type | 국제해사기구
(IMO)번호 ¹⁾
IMO Number ¹⁾ |
|--------------------|--|-------------------------|----------------------|-----------------|---|
| | | | | | |

용골을 거치한 날짜, 이와 동등한 건조단계에 도달한 날짜 또는 위험화학품산적운송선으로의 개조가 시작된 날짜(개조선인 경우):

Date on which keel was laid or on which the ship was at a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or, (in the case of a converted ship) date on which conversion to a chemical tanker was commenced: _____

이 선박은 규칙의 다음 개정에 대하여 충분히 만족함:

The ship also complies fully with the following amendments to the Code: _____

이 선박은 규칙 중 다음 규정의 적용이 면제됨:

The ship is exempted from compliance with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e Code: _____

이 증서는 다음 사항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1. 이 선박은 규칙 1.5절에 따라 검사가 행하여졌음.

That the ship has been survey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section 1.5 of the Code.

2. 이 검사의 결과, 이 선박의 구조와 설비 및 그 상태가 모든 점에서 만족하며, 규칙의 관련 규정에 적합함.

That the survey showed that the construction and equipment of the ship and the conditions thereof are in all respects satisfactory and that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3. 이 선박은 73/78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II의 제14규칙에 의하여 요구되는 동 협약 부속서 II의 부록 4에 따른 지침서를 비치하고, 이 선박의 장치 및 설비는 같은 지침서에 규정된 모든 점에서 만족함.

That the ship has been provided with a Manual in accordance with Appendix 4 of Annex II of MARPOL 73/78 as called for by regulation 14 of Annex II, and that the arrangements and equipment of the ship prescribed in the Manual are in all respects satisfactory.

1) 국제해사기구에서 Res. A.600(15)로 채택된 IMO 선박식별번호계획에 따른 것.

In accordance with IMO ship identification number scheme adopted by the Organization by resolution A.600(15).

(8쪽 중 제2쪽)

4. 이 선박은 규칙 및 73/78 해양오염방지협약의 모든 관련 작업 요건이 준수될 것을 조건으로 다음 물질의 산적운송에 적합함.

That the ship meets the requirements for the carriage in bulk of the following products, provided that all relevant operational provisions of the Code and Annex II of MARPOL 73/78 are observed.

| 화물
Products | 운송조건(탱크 번호 등)
Conditions of carriage(tank numbers, etc.) | 오염분류
Pollution
Category |
|----------------|---|-------------------------------|
| | | |

추가서명과 날짜가 기입된 별지 1에 계속됨²⁾.

Continued on attachment 1, additional signed and dated sheets*.

이 표에 기재되어 있는 탱크 번호는 서명 및 날짜가 기입된 별지 2의 탱크 배치도에 명시되어 있음.

Tank numbers referred to in this list are identified on attachment 2, signed and dated tank plan.

- 5²⁾ 규칙 1.4/2.8.2에 따라 이 선박에 대한 규칙의 규정이 다음과 동등한 방법으로 수정되었음:

That, in accordance with 1.4/2.8.2, the provisions of the Code are modified in respect of the ship in the following manner:

6. 규칙 2.2.5에 따라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자료가 이 선박에 제공되어 있음.

That the loading and stability information booklet required by paragraph 2.2.5 of the Code has been supplied to the ship in an approved form.

7. 이 선박은 다음과 같이 적하되어야 함:

That the ship must be loaded:

- 1²⁾ 규칙 2.2.6에 따라 설치된 복원성 계산기기를 사용하여 손상/비손상 복원성요건에 적합함이 검증된 조건으로만 적하
only in accordance with loading conditions verified compliant with intact and damage stability requirements using the approved stability instrument f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2.6 of the Code;
- 2²⁾ 규칙 2.2.7에 의해 면제되거나, 규칙 2.2.6에 의해 요구되는 승인된 복원성 계산기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는 다음의 승인된 방법으로 적하되어야 함.
where a waiver permitted by paragraph 2.2.7 of the Code is granted and the approved stability instrument required by paragraph 2.2.6 of the Code is not fitted, loading shall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approved methods;
- (i) 위 제6호에 따른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자료에서 제공된 적하조건에 적합²⁾: 또는
in accordance with the loading conditions provided in the approved loading and stability information booklet referred to in 6 above²⁾; or
- (ii) 승인된 방법에 의해 원격으로 검증된 조건으로 적하; 또는
in accordance with a loading conditions verified remotely using an approved means; or
- (iii) 위 제6호에 따른 적하 및 복원성 자료에 승인된 적하범위 내에서 적하; 또는
in accordance with a loading condition which lies within an approved range of conditions defined in the approved loading and stability information booklet referred to in 6 above; or
- (iv) 위 제6호에 따른 적하 및 복원성 자료에 규정되어 있는 승인된 KG/GM 값에 적합한 손상/비손상복원성 요건에 따라 적하
in accordance with a loading condition verified using approved critical KG/GM data defined in the approved loading and stability information booklet referred to in 6 above;
- 3²⁾ 이 증서에 첨부된 적하 제한 조건에 따라야 함.
in accordance with the loading limitations appended to this Certificate.

2) 해당되지 않으면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8쪽 중 제3쪽)

만약 위 적하자료에 의한 것 이외의 방법으로 적하하려는 경우 그 적하조건의 판별에 필요한 계산서를 미리 주관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³⁾

Where it is required to load the ship other than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instruction, then the necessary calculations to justify the proposed loading conditions shall be communicated to the certifying Administration who may authorize in writing the adoption of the proposed loading condition.³⁾

이 증서는 규칙 제1.5절에 따른 검사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_____년_____월_____일⁴⁾까지 유효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_____day of _____⁴⁾ subject to surveys in accordance with 1.5 of the Code.

이 증서 발급을 위한 검사완료일

Completion date of the survey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 _____
(dd/mm/yyyy)

_____년_____월_____일_____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_____ on the _____ day of _____.

지방해양수산청장 

(Administrator of the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선급법인의 장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

증서의 완료에 관한 주의:

Notes on completion of Certificate:

1 이 증서는 1974 SOLAS협약 및 73/78 해양오염방지협약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만 발급할 수 있다.
The Certificate can be issued only to ships entitled to fly the flags of States which are both a Contracting Government to the 1974 SOLAS Convention and a Party to MARPOL 73/78.

2 선박의 형식: 이 난에 기입사항은 모든 관련 권고와 관련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예) "2형식"으로 기입하는 것은 코드에서 규정된 모든 관점에서 형식을 의미한다.

Ship Type: Any entry under this column must relate to all relevant recommendations, e.g. an entry "Type 2" means type 2 in all respects prescribed by the Code.

3 화물: 코드의 제17장에 등록된 화물, 또는 코드 1.1.6항에 따라 주관청에 의하여 평가된 화물이 등록되어야 한다. 후자의 "새로운" 화물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규정된 특별 요건에 주의하여야 한다.

Products: Products listed in chapter 17 of the Code, or which have been evaluated by the Administration in accordance with 1.1.6 of the Code, shall be listed. In respect of the latter "new" products, any special requirements provisionally prescribed shall be noted.

4 화물: 선박이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 명부는 코드에서 다루지 않는 Z류의 유해액체물질들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18장 Z류"로 식별하여야 한다.

Products: The list of products the ship is suitable to carry shall include the Noxious Liquid Substances of Category Z which are not covered by the Code and shall be identified a "chapter 18 Category Z".

3) 해당 문구를 이 증서에 포함시키는 대신 서명 및 날인된 별지에 해당 문구를 기재하여 이 증서에 첨부할 수 있음.

Instead of being incorporated in the Certificate, this text may be appended to the Certificate if signed and stamped.

4) 규칙의 1.5.5.1항에 따라 주관청이 명시한 완료일을 기재할 것. 이 날짜의 일월은, 규칙의 1.5.6.8항에 따라서 개정되지 않은 경우, 규칙 1.3.3항에 명시된 연차일과 같아야 한다.

Insert the date of expiry as specified by the Administration in accordance with 1.5.6.1 of the Code. The day and the month of this day correspond to the anniversary date as defined in 1.3.3 of the Code, unless amended in accordance with 1.5.6.8 of the Code.

검사의 확인

ENDORSEMENT FOR ANNUAL AND INTERMEDIATE SURVEYS

이 증서는 선박이 규칙 제1.5.2항에 따라 요구되는 검사 결과 규칙의 관련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

THIS IS TO CERTIFY THAT at a survey required by 1.5.2 of the Code,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연차검사:

Annual Survey: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dd/mm/yyyy): _____

연차/중간²⁾ 검사:

Annual/Intermediate²⁾ Survey: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dd/mm/yyyy): _____

연차/중간²⁾ 검사:

Annual/Intermediate²⁾ Survey: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dd/mm/yyyy): _____

연차검사:

Annual Survey: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dd/mm/yyyy): _____

2) 해당되지 않으면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제1.5.6.8.3항에 따른 연차검사/중간검사
Annual/intermediate survey in accordance with 1.5.6.8.3

이 증서는 선박이 규칙 제1.5.6.8.3항에 따른 연차/중간²⁾검사의 결과 규칙의 관련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n annual/intermediate²⁾ survey in accordance with 1.5.6.8.3 of the Code,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제1.5.6.3항이 적용되는 경우 증서의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일 때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certificate if valid for less
than 5 years where 1.5.6.3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규칙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므로 규칙 제1.5.6.3항에 따라 _____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and this certificate should, in accordance with 1.5.6.3 of the Code,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정기검사 완료 후 제1.5.6.4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이서
Endorsement where the renewal survey has been completed and 1.5.6.4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규칙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므로 규칙 1.5.6.4항에 따라 _____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and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1.5.6.4 of the Code,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2) 해당되지 않으면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8쪽 중 제6쪽)

제1.5.6.5/1.5.6.6항이 적용되는 경우 검사 예정 항에 도착시까지**또는 유예기간까지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Endorsement to extend the validity of the certificate until reaching the
port of survey or for a period of grace where 1.5.6.5/1.5.6.6 applies**

이 증서는 규칙 제1.5.6.5/1.5.6.6²⁾항에 따라서 _____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is certificate should, in accordance with 1.5.6.5/1.5.6.6²⁾ of the Code,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제1.5.6.8항이 적용되는 경우 연차일을 앞당기는 것에 대한 이서**Endorsement for advancement of anniversary date where 1.5.6.8 applies**

규칙 제1.5.6.8항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_____이다.

In accordance with 1.5.6.8 of the Code, the new anniversary date is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규칙 제1.5.6.8항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_____이다.

In accordance with 1.5.6.8 of the Code, the new anniversary date is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2) 해당되지 않으면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국제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 별지 1
ATTACHMENT 1 TO THE INTERNATIONAL CERTIFICATE OF FITNESS
FOR THE CARRIAGE OF DANGEROUS CHEMICALS IN BULK

이 별지는 앞의 4항에 기재된 화물 및 운송조건의 계속임.

Continued list of products to those specified in section 4, and the conditions of their carriage.

| 화물
Products | 운송조건(탱크번호 등)
Conditions of carriage(tank numbers, etc.) | 오염분류
Pollution
Category |
|----------------|--|-------------------------------|
| | | |

날짜

Date: _____

지방해양수산청장 
 (Administrator of the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선급법인의 장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

국제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 별지 2
ATTACHMENT 2 TO THE INTERNATIONAL CERTIFICATE OF FITNESS
FOR THE CARRIAGE OF DANGEROUS CHEMICALS IN BUL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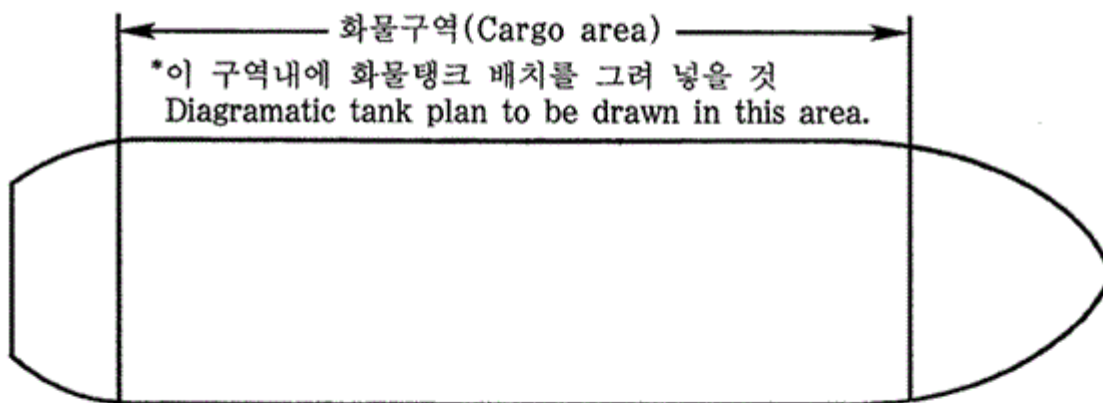
탱크배치도
TANK PLAN

선명:

Name of ship: _____

선박번호 또는 호출부호:

Distinctive NO. or letters: _____



날짜

Date: _____

지방해양수산청장 
(Administrator of the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선급법인의 장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9. 8. 20.>

(제1쪽)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_____

유해액체물질의산적운송을위한국제오염방지증서
INTERNATIONAL POLLUTION PREVENTION CERTIFICATE FOR
THE CARRIAGE OF NOXIOUS LIQUID SUBSTANCES IN BULK

대 한 민 국
REPUBLIC OF KOREA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및 동협약에 관한 1978년의정서」(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_____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1973, as modified by the Protocol of 1978 relating thereto, as amend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vention”)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by _____.

| 선명
Name of Ship | 선박번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 선적항
Port of Registry | 총톤수
Gross Tonnage | IMO 번호*
IMO Number* |
|--------------------|---------------------------------------|-------------------------|----------------------|------------------------|
| | | | | |

이 증서는 다음 사항을 증명합니다 :

THIS IS TO CERTIFY:

1. 이 선박은 협약 부속서 II 제8규칙에 따라 검사가 행하여졌음.

That the ship has been surveyed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8 of Annex II of the Convention.

2. 검사의 결과, 이 선박의 구조, 설비, 장치, 부착물, 배치와 재료 및 이들의 상태가 모든 점에서 만족하며 또한 이 선박은 협약 부속서 II의 적용요건에 적합함

That the survey showed that the structure, equipment, systems, fittings, arrangements and materials of the ship and the condition thereof are in all respects satisfactory and that the ship complies with the applicable requirements of Annex II of the Convention.

3. 이 선박은 협약 부속서 II의 제14에 의하여 요구되는 방법 및 장치의 지침서를 비치하고, 이 선박의 장치 및 설비는 모든 점에서 만족한다.

That the ship has been provided with a Procedures and Arrangements Manual as required by regulation 14 of Annex II of the Convention, and that the arrangements and equipment of the ship prescribed in the Manual are in all respects satisfactory.

*결의 A.600(15)-IMO 선박식별번호 제도에 따름

In accordance with the IMO Ship Identification Number Scheme, adopted by the Organization by resolution A.600(15).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220g/m²]

(제2쪽)

4. 이 선박은 협약 부속서 II의 모든 관련 작업요건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음 유해액체물질의 산적운송을 위하여 협약 부속서 II의 요건에 적합함

That the ship is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Annex II to MARPOL 73/78 for the carriage in bulk of the following noxious liquid substances, provided that all relevant provisions of Annex II are observed.

| 유해액체물질
Noxious liquid substances | 운송조건(탱크 번호등)
Conditions of carriage
(tank numbers, etc.) | 오염분류
Pollution
Category |
|---|--|-------------------------------|
| | | |
| *추가서명과 날짜가 기입된 별지 1에 계속됨. ²⁾
Continued on additional signed and dated sheets. | | |

이 증서는 협약 부속서 II 제8규칙에 따른 검사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 유효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_____ day of _____ subject to surveys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8 of Annex II of the Convention.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_____ on the _____ day of _____.

지방해양수산청장 

(Administrator of the Regional Maritime Affairs & Fisheries Office)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선급법인의 장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

*해당되지 아니하면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제3쪽)

검사의 확인

ENDORSEMENT FOR ANNUAL AND INTERMEDIATE SURVEYS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 부속서 II의 규칙 제8에 따라 요구되는 검사결과 협약의 관련 제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 survey required by regulation 8 of Annex II of the Convention,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 | |
|--|--|
| 연차검사
Annual Survey: |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
| 연차*/중간*검사
Annual*/Intermediate* Survey: |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
| 연차*/중간*검사
Annual*/Intermediate* Survey: |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
| 연차검사
Annual Survey: |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

*해당되지 아니하면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제4쪽)

제10.8.3규칙에 따른 연차검사/중간검사
Annual/intermediate survey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2(8)(c)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 부속서 II 제10.8.3규칙에 따른 연차*/중간*검사의 결과 협약의 관련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n annual*/intermediate* survey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0.8.3 of Annex II of the Convention,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제10.3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증서의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일 때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certificate if valid for
less than 5 years where regulation 10.3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관련요건에 적합하므로 협약 부속서 II 제10.3규칙에 따라 _____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nd this certificate should,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0.3 of Annex II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정기검사 완료 후 제10.4규칙이 적용되는 경우의 이서
Endorsement where the renewal survey has been completed and
regulation 10.4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관련요건에 적합하므로 협약 부속서 II 제10.4규칙에 따라 _____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nd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0.4 of Annex II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해당되지 아니하면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제5쪽)

제10.5 또는 10.6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검사예정항에 도착시까지

또는 유예기간까지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validity of the certificate until reaching the port
of survey or for a period of grace where regulation 10.5 or 10.6 applies

이 증서는 협약 부속서 II 제10.5*/10.6*규칙에 따라서 _____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is certificate should,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0.5*/10.6* of Annex II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제10.8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연차일을 앞당기는 것에 대한 이서

Endorsement for advancement of anniversary date where regulation
10.8 applies

협약 부속서 II 제10.8규칙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_____이다.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0.8 of Annex II of the Convention, the new
anniversary date is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협약 부속서 II 제10.8규칙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_____이다.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0.8 of Annex II of the Convention, the new
anniversary date is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해당되지 아니하면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제6쪽)

유해액체물질의산적운송을위한국제오염방지증서 별지 1
 ATTACHMENT 1 TO THE INTERNATIONAL POLLUTION
 PREVENTION CERTIFICATE FOR THE CARRIAGE OF
 NOXIOUS LIQUID SUBSTANCES IN BULK

이 별지는 제4항에 기재된 유해액체물질 및 운송조건의 계속임

Continued list of Noxious Liquid Substances to those specified in section 4, and the conditions of their carriage.

| 유해액체물질
Noxious liquid substances | 운송조건(탱크 번호등)
Conditions of carriage
(tank numbers, etc.) | 오염분류
Pollution
Category |
|-------------------------------------|--|-------------------------------|
| | | |

날짜

Date: _____

지방해양수산청장 인

(Administrator of the Regional Maritime Affairs & Fisheries Office)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인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선급법인의 장 인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_____



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
CERTIFICATE OF FITNESS FOR THE CARRIAGE
OF DANGEROUS CHEMICALS IN BULK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위험화학품산적운반선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규칙」 [해사안전위원회 결의9(53) 및 해양환경보호위원회 결의 20(22)을 말하며,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Code for the Construction and Equipment of Ships Carrying Dangerous Chemicals in Bulk [resolutions MSC.9(53) and MEPC.20(22), as amend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by _____.

| 선명
Name of Ship | 선박번호 또는 호
출부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 선적항
Port of
Registry | 총톤수
Gross Tonnage | 선형
Ship Type | 국제해사기구
(IMO)번호
IMO Number |
|--------------------|---|----------------------------|----------------------|-----------------|---------------------------------|
| | | | | | |

용골을 거치한 날짜, 이와 동등한 건조단계에 도달한 날짜 또는 위험화학품산적운송선으로의 개조가 시작된 날짜(개조선인 경우):

Date on which keel was laid or ship was at a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or, (in the case of a converted ship) date on which conversion to a chemical tanker was commenced: _____,

건조계약일이 이루어진 날짜:

Date on which the building contract was placed: _____,

이 선박은 규칙의 다음 개정에 대하여 충분히 만족함:

The ship also complies fully with the following amendments to the Code:

이 선박은 규칙 중 다음 규정의 적용이 면제됨:

The ship is exempted from compliance with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e Code:

이 증서는 다음사항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1. 이 선박은 규칙 1.6절의 규정에 따라 검사가 행하여졌음

That the ship has been survey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section 1.6 of the Code.

2. 검사의 결과, 이 선박의 구조와 설비 및 그 상태가 모든 점에서 만족하며, 다음에 언급된 선박에 적용되는 규칙의 관련 규정에 적합함:

That the survey showed that the construction and equipment of the ship and the condition thereof are in all respects satisfactory and that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applicable to:

*.1 1.7.2항에 언급된 선박
ship referred to in 1.7.2

*.2 1.7.3항에 언급된 선박
ships referred to in 1.7.3

(8쪽 중 제2쪽)

3. 이 선박은 73/78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II의 제14규칙에 의하여 요구되는 동 협약 부속서 II의 부록4에 따른 지침서를 비치하고, 이 선박의 장치 및 설비는 같은 지침서에 규정된 모든 점에서 만족함.

That the ship has been provided with a Manual in accordance with Appendix 4 of MARPOL 73/78 Annex II as called for by regulation 14 of the Annex, and the arrangements and equipment of the ship prescribed in the Manual are in all relevant respects satisfactory.

4. 이 선박은 규칙 및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II의 모든 관련 작업요건이 준수될 것을 조건으로 다음 물질의 산적운송에 적합함

That the ship meets the requirements for the carriage in bulk of the following products, provided that all relevant operational provisions of the Code and MARPOL Annex II are observed.

| 화물
Products | 운송조건(탱크번호등)
Conditions of carriage
(tank numbers, etc.) | 오염분류
Pollution
Category |
|--|---|-------------------------------|
| <p>서명과 날자가 기입된 별지 1에 계속됨*</p> <p>Continued on attachment 1, signed and dated sheets.*</p> <p>이 표에 기재되어 있는 탱크번호는 서명 및 날자가 기입된 별지 2의 탱크배치도에 명시되어 있음</p> <p>Tank numbers referred to in this list are identified on attachment 2, signed and dated tank plan.</p> | | |

5. 규칙 1.7.3*/2.2.5*에 따라 이 선박에 대한 규칙의 규정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정되었음:
That, in accordance with 1.7.3*/2.2.5*, the provisions of the Code are modified in respect of the ship in the following manner:

6. 규칙 2.2.1.1에 따라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지침서가 이 선박에 제공되어 있음.

That the loading and stability manuals required by paragraph 2.2.1.1 of the Code have been supplied to the ship in an approved form.

7. 이 선박은 다음과 같이 적하되어야 함 :

That the ship must be loaded :

- 1* 규칙 2.2.1.2에 따라 설치된 복원성 계산기기를 사용하여 손상/비손상 복원성요건에 적합함이 검증된 조건으로만 적하

only in accordance with loading conditions verified compliant with intact and damage stability requirements using the approved stability instrument f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2.1.2 of the Code;

*해당되지 않으면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8쪽 중 제3쪽)

.2* 규칙 2.2.1.3에 의해 면제되거나, 규칙 2.2.1.2에 의해 요구되는 승인된 복원성 계산기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는 다음의 승인된 방법으로 적하되어야 함.

where a waiver permitted by paragraph 2.2.1.3 of the Code is granted and the approved stability instrument required by paragraph 2.2.1.2 of the Code is not fitted, loading shall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approved methods;

- (i) 위 제6호에 따른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지침서에서 제공된 적하 조건에 적합 ; 또는
in accordance with the loading conditions provided in the approved loading and stability manuals referred to in 6 above; or
- (ii) 승인된 방법에 의해 원격으로 검증된 조건으로 적하; 또는
in accordance with a loading conditions verified remotely using an approved means _____ ; or
- (iii) 위 제6호에 따른 적하 및 복원성 지침서에 승인된 적하범위 내에서 적하; 또는
in accordance with a loading condition which lies within an approved range of conditions defined in the approved loading and stability manuals referred to in 6 above; or
- (iv) 위 제6호에 따른 적하 및 복원성 지침서에 규정되어 있는 승인된 KG/GM 값에 적합한 손상/비 손상복원성 요건에 따라 적하
in accordance with a loading condition verified using approved critical KG/GM data defined in the approved loading and stability manuals referred to in 6 above;

.3* 이 증서에 첨부된 적하 제한 조건에 따라야 함.

in accordance with the loading limitations appended to this Certificate.

만약 위 적하자료에 의한 것 이외의 방법으로 적하하고자 할 경우는 그 적하 조건의 판별에 필요한 계산서를 미리 주관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Where it is required to load the ship other than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instruction, then the necessary calculations to justify the proposed loading conditions should be communicated to the certifying Administration who may authorize in writing the adoption of the proposed loading condition.**

이 증서는 규칙 제1.6절에 따른 검사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_____년_____월 _____일까지 유효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_____ day of _____ subject to surveys and in accordance with 1.6 of the Code.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_____ on the _____ day of _____.

지방해양수산청장 [인]

(Administrator of the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인]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선급법인의 장 [인]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

*해당되지 않으면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해당 문구를 이 증서에 포함시키는 대신 서명 및 날인된 별지에 해당 문구를 기재하여 이 증서에 첨부할 수 있음.

Instead of being incorporated in the Certificate, this text may be appended to the Certificate if duly signed and stamped.

(8쪽 중 제4쪽)

검사의 확인

ENDORSEMENT FOR ANNUAL AND INTERMEDIATE SURVEYS

이 증서는 선박이 규칙 제1.6.2항에 따라 요구되는 검사결과 규칙의 관련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

THIS IS TO CERTIFY That, at a survey required by 1.6.2 of the Code,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

연차검사
Annual Survey: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연차*/중간*검사
Annual*/Intermediate* Survey: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연차*/중간*검사
Annual*/Intermediate* Survey: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연차검사
Annual Survey: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8쪽 중 제5쪽)

제1.6.6.8.3항에 따른 연차검사/중간검사
Annual/intermediate survey in accordance with 1.6.6.8.3

이 증서는 선박이 규칙 제1.6.6.8.3항에 따른 연차*/중간*검사의 결과 규칙의 관련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n annual*/intermediate* survey in accordance with 1.6.6.8.3 of the Code,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제1.6.6.3항이 적용되는 경우 증서의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일 때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certificate if valid for less than 5 years
 where 1.6.6.3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규칙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므로 규칙 제1.6.6.3항에 따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and this certificate should, in
 accordance with 1.6.6.3 of the Code,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정기검사 완료후 제1.6.6.4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이서
**Endorsement where the renewal survey has been completed
 and 1.6.6.4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규칙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므로 규칙 1.6.6.4항에 따라 _____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and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1.6.6.4 of the Code,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해당되지 않으면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8쪽 중 제6쪽)

**제1.6.6.5/1.6.6.6항이 적용되는 경우 검사 예정항에 도착시까지
또는 유예기간까지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validity of the certificate until reaching the
port of survey or for a period of grace where 1.6.6.5/1.6.6.6 applies**

이 증서는 규칙 제1.6.6.5*/1.6.6.6*항에 따라서 _____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is certificate should, in accordance with 1.6.6.5*/1.6.6.6* of the Code,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제1.6.6.8항이 적용되는 경우 연차일을 앞당기는 것에 대한 이서
Endorsement for advancement of anniversary date where 1.6.6.8 applies

규칙 제1.6.6.8항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_____이다.
 In accordance with 1.6.6.8 of the Code, the new anniversary date is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규칙 제1.6.6.8항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_____이다.
 In accordance with 1.6.6.8 of the Code, the new anniversary date is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해당되지 않으면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 별지 1
ATTACHMENT 1 TO THE CERTIFICATE OF FITNESS FOR THE
CARRIAGE OF DANGEROUS CHEMICALS IN BULK

이 별지는 제4항에 기재된 화물 및 운송조건의 계속임.

Continued list of products to those specified in section 4, and the conditions of their carriage.

| 화물
Products | 운송조건(탱크 번호 등)
Conditions of carriage
(tank numbers, etc.) | 오염분류
Pollution
Category |
|----------------|---|-------------------------------|
| | | |

날짜

Date: _____

지방해양수산청장 [인]
 (Administrator of the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인]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선급법인의 장 [인]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

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 별지 2
ATTACHMENT 2 TO THE CERTIFICATE OF FITNESS FOR THE
CARRIAGE OF DANGEROUS CHEMICALS IN BUL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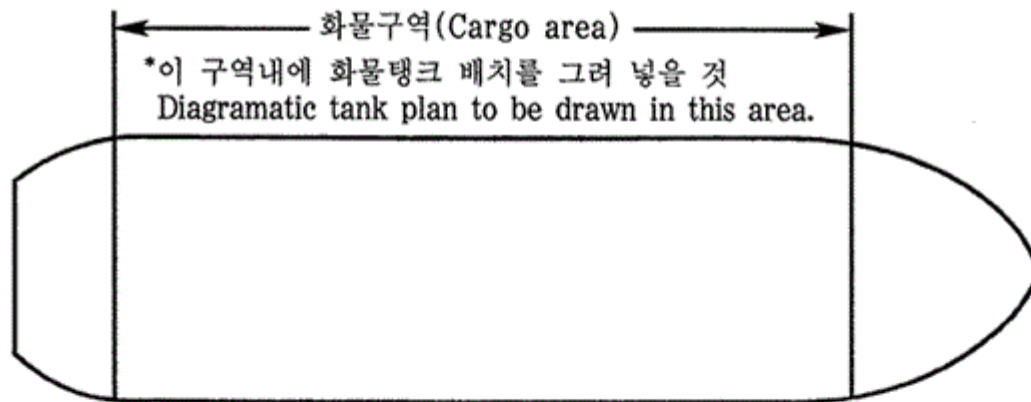
탱크배치도
TANK PLAN

선명:

Name of ship: _____

선박번호 또는 호출부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_____



날짜:

Date: _____

지방해양수산청장 [인]
(Administrator of the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인]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선급법인의 장 [인]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_____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

INTERNATIONAL OIL POLLUTION PREVENTION CERTIFICATE

대 한 민 국
REPUBLIC OF KOREA

이 증서에는 구조 및 설비 기록부를 추록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This certificate shall be supplemented by a Record of Construction and Equipment.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수정되고, 그 이후 개정된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_____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1973, as modified by the Protocol of 1978 relating thereto, as amend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vention")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by _____.

선박의 명세

Particulars of ship

| 선명
Name of Ship | 선박번호 또는 호출부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 선적항
Port of Registry | 총톤수
Gross Tonnage | 재화중량톤수(미터톤) ¹⁾
Deadweight of Ship (metric tonnes) ¹⁾ | 국제해사기구 (IMO) 번호 ²⁾
IMO Number ²⁾ |
|--------------------|---|-------------------------|----------------------|---|---|
| | | | | | |

선박의 종류³⁾:Type of Ship³⁾:

유조선
Oil tanker

유조선 외의 선박으로 협약 부속서 I 제2.2규칙에 규정하는 화물 탱크를 가진 선박

Ship other than an oil tanker with cargo tanks coming under regulation 2.2 of Annex I of the Convention

그 밖의 선박

Ship other than any of the above

1) 유조선에만 적용.

For oil tankers only.

2) 국제해사기구에서 Res. A.600(15)로 채택된 IMO 선박식별번호계획에 따른 것.

In accordance with IMO ship identification number scheme adopted by the Organization by resolution A.600(15).

3) 해당되지 않으면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21쪽 중 제2쪽)

이 증서는 다음 사항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1. 이 선박은 협약 부속서 I 제6규칙에 따라 검사를 받았음.

That the ship has been surveyed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6 of Annex I of the Convention.

2. 검사의 결과 이 선박의 구조·설비시스템·장치·부착물·배치 및 재료와 그 상태가 모든 점에서 만족하며, 이 선박이 협약 부속서 I의 해당 요건에 적합함.

That the survey shows that the structure, equipment systems, fittings, arrangements and material of the ship and the conditions thereof are in all respects satisfactory and that the ship complies with the applicable requirements of Annex I of the Convention.

이 증서는 협약 부속서 I 제6규칙에 따라 검사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_____년____월____일⁴⁾까지 유효합니다.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_____day of _____⁴⁾ subject to surveys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6 of Annex I of the Convention.

증서 발행의 근거가 되는 검사가 완료된 날짜 : _____년____월____일

Completion date of the survey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 _____

_____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_____.

지방해양수산청장 

(Administrator of the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선급법인의 장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

- 4) 협약 부속서 I 제10.1규칙에 따라 주관청이 지정한 대로 만료일을 기재한다. 이 날짜의 월일은 협약 부속서 I 제10.8규칙에 따라 수정되지 않으면 협약 부속서 I 제1.27규칙에 정의된 연차일과 같다.

Insert the date of expiry as specified by the Administration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0.1 of Annex I of the Convention. The day and the month of this day correspond to the anniversary date as defined in regulation 1.27 of Annex I of the Convention, unless amended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0.8 of Annex I of the Convention.

제2종 중간 검사 및 제1종 중간 검사에 관한 이서 ENDORSEMENT FOR ANNUAL AND INTERMEDIATE SURVEYS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 부속서 I 제6규칙에 따라 요구되는 검사 결과 협약의 관련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 survey required by regulation 6 of Annex I of the Convention,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 | |
|-----------------------------|--|
| 제2종 중간 검사
Annual Survey: |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
|-----------------------------|--|

| | |
|---|--|
| 제2종 중간 ³⁾ /제1종 중간 ³⁾ 검사
Annual ³⁾ /Intermediate ³⁾ Survey: |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
|---|--|

| | |
|---|--|
| 제2종 중간 ³⁾ /제1종 중간 ³⁾ 검사
Annual ³⁾ /Intermediate ³⁾ Survey: |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
|---|--|

| | |
|-----------------------------|--|
| 제2종 중간 검사
Annual Survey: |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
|-----------------------------|--|

3) 해당되지 않으면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제10.8.3규칙에 따른 제2종 중간/제1종 중간 검사
Annual/intermediate survey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0.8.3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 부속서 I 제10.8.3규칙에 따른 제2종 중간/제1종 중간³⁾ 검사의 결과 협약의 관련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n annual/intermediate³⁾ survey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0.8.3 of Annex I of the Convention,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제10.3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증서의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일 때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certificate if valid for less
than 5 years where regulation 10.3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므로 협약 부속서 I 10.3규칙에 따라 _____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nd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0.3 of Annex I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정기 검사 완료 후 제10.4규칙이 적용되는 경우의 이서
**Endorsement where the renewal survey has been completed and
regulation 10.4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므로 협약 부속서 I 제10.4규칙에 따라 _____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nd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0.4 of Annex I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3) 해당되지 않으면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21쪽 중 제5쪽)

**제10.5 또는 제10.6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검사 예정항에 도착 시까지
또는 유예기간까지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validity of the certificate until reaching the
port of survey or for a period of grace where regulation 10.5 or 10.6 applies**

이 증서는 협약 부속서 I 10.5 또는 10.6³⁾규칙에 따라서 _____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0.5 of 10.6³⁾ of Annex I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제10.8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연차일을 앞당기는 것에 대한 이서
**Endorsement for advancement of anniversary date where regulation 10.8
applies**

협약 부속서 I 제10.8규칙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_____이다.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0.8 of Annex I of the Convention, the new anniversary date is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협약 부속서 I 제10.8규칙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_____이다.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0.8 of Annex I of the Convention, the new anniversary date is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3) 해당되지 않으면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10PP증서) 추록(FORM A)
 SUPPLEMENT TO THE INTERNATIONAL OIL POLLUTION PREVENTION CERTIFICATE
 (10PP CERTIFICATE)

유조선 외의 선박을 위한 구조 및 설비의 기록
 RECORD OF CONSTRUCTION AND EQUIPMENT FOR SHIPS
 OTHER THAN OIL TANKERS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및 같은 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부속서 I의 규정에 의합니다.

In respect of provisions of Annex I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1973, as modified by the Protocol of 1978 relating thereto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vention").

1. 선박의 중요 항목:

PARTICULARS OF SHIP:

1.1 선명:

Name of ship: _____

1.2 선박 번호 또는 호출부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_____

1.3 선적항:

Port of registry: _____

1.4 총톤수:

Gross tonnage: _____

1.5 건조일:

Date of build:

1.5.1 건조계약일

Date of building contract _____

1.5.2 용골이 거치 되거나 또는 그와 동등의 건조 단계에 도달한 날짜

Date on which keel was laid or ship was at a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_____

1.5.3 인도일

Date of delivery _____

1.6 주요 개조(적용되는 경우):

Major conversion(if applicable):

1.6.1 개조 계약일

Date of conversion contract _____

1.6.2 개조가 개시된 날

Date on which conversion was commenced _____

1.6.3 개조가 완료된 날

Date of completion of conversion

1.7 인도가 예기치 못한 사유에 의하여 늦어져서 제1.28.1항의 규정에 따른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인도된 선박"이라고 주관청에 의하여 인정된 선박:

The ship has been accepted by the Administration as a "ship delivered on or before 31 December 1979" under regulation 1.28.1 due to unforeseen delay in delivery☐

(21쪽 중 제7쪽)

2. 기관구역의 선저폐수 및 연료유탱크로부터 기름 배출을 제어하기 위한 설비(제16규칙 및 제14규칙)

EQUIPMENT FOR THE CONTROL OF OIL DISCHARGE FROM MACHINERY SPACE BILGES AND OIL FUEL TANKS(Regulations 16 and 14)

2.1 연료유 탱크에 선박평형수의 적재:

Carriage of ballast water in oil fuel tanks:

2.1.1 통상의 상황에서 연료유 탱크에 선박평형수를 적재할 수 있는 선박

The ship may under normal conditions carry ballast water in oil fuel tanks ☐

2.2 비치되어 있는 기름여과장치:

Type of oil filtering equipment fitted:

2.2.1 기름여과장치(15 ppm)(제14.6규칙)

Oil filtering(15 ppm) equipment(Regulation 14.6) ☐

2.2.2 선저폐수농도 경보장치 및 자동배출정지장치를 갖춘 기름여과장치(15ppm)(제14.7규칙)

Oil filtering(15 ppm) equipment with alarm and automatic stopping device(Regulation 14.7) ☐

2.3 승인기준:

Approval standards:

2.3.1 유수분리/기름여과장치:

The separating/filtering equipment:

.1 결의 A.393(X)에 따라 승인된 것

has been approved in accordance with Resolution A.393(X) ☐

.2 결의 MEPC.60(33)에 따라 승인된 것

has been approved in accordance with Resolution MEPC.60(33) ☐

.3 결의 MEPC.107(49)에 따라 승인된 것

has been approved in accordance with Resolution MEPC.107(49) ☐

.4 결의 A.233(VII)에 따라 승인된 것

has been approved in accordance with Resolution A.233(VII) ☐

.5 결의 A.393(X) 또는 결의 A.233(VII)에 의하지 않은 국내기준에 따라 승인된 것

has been approved in accordance with National Standards not based upon Resolution A.393(X) or A.233(VII) ☐

.6 승인되지 않은 것

has not been approved ☐

2.3.2 부속처리장치는 결의 A.444(XI)에 따라 승인되었다.

The process unit has been approved in accordance with Resolution A.444(XI). ☐

2.3.3 유분농도계:

The oil content meter:

.1 결의 A.393(X)에 따라 승인된 것

has been approved in accordance with Resolution A.393(X) ☐

.2 결의 MEPC.60(33)에 따라 승인된 것

has been approved in accordance with Resolution MEPC.60(33) ☐

.3 결의 MEPC.107(49)에 따라 승인된 것

has been approved in accordance with Resolution MEPC.107(49) ☐

2.4 장치의 최대 처리 능력은 _____세제곱미터/시간

Maximum throughput of the system is _____m³/h.

2.5 제14규칙의 면제:

Waiver of Regulation 14:

2.5.1 제14.1규칙 또는 제14.2규칙의 요건은 제14.5규칙을 따르는 선박에 대하여는 면제된다.

2.5.1.1 이 선박은 국제특별해역 내의 항해에만 전적으로 종사한다.

The ship is engaged exclusively on voyages within special area(s). ☐

2.5.1.2 이 선박에 대하여는 고속선의 안전에 대한 국제코드에 따라 증서를 발행하고, 해당 선박은 24시간을 넘지 않는 항해시간이 예정되어 있다.

The ship is certified under the International Code of Safety for High-Speed Craft an engaged on a scheduled service with a turn-around time not exceeding 24 hours. ☐

2.5.2 이 선박은 다음과 같이 모든 선저폐수를 선내에 보유하기 위한 선저폐수저장장치를 설치하고 있다.

The ship is fitted with holding tank(s) for the total retention on board of all oily bilge water as follows. ☐

(21쪽 중 제8쪽)

| 탱크 식별 기호
Tank
Identification | 탱크 배치(Tank Location) | | 용량
Volume
(m³) |
|------------------------------------|-----------------------------------|---------------------------|--------------------------------|
| | 늑골 (Frames)
부터 (from) ~까지 (to) | 측면 위치
Lateral Position | |
| | | | |
| | | | 총용량
Total Volume
_____m³ |

2A.1 이 선박은 제12A규칙에 따라서 건조될 것이 요구되며 다음의 요건에 적합하다 :

The ship is required to be constructed according to regulation 12A and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6항 그리고 7항이나 8항(이중선체구조)

paragraph 6 and either 7 or 8(double hull construction)☐

11항(사고로 인한 연료유 유출성능 비율)

paragraph 11(accidental oil fuel outflow performance)☐

2A.2 이 선박은 제12A규칙의 요건에 적합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The ship is not required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regulations 12A☐

3. 유성찌꺼기의 저장 및 처리(제12규칙)와 선저폐수저장탱크¹⁾

MEANS FOR RETENTION AND DISPOSAL OF OIL RESIDUES(SLUDGE) (Regulation 12) AND OILY BILGE WATER HOLDING TANK(S)¹⁾

3.1 이 선박에는 다음과 같이 유성찌꺼기의 저장을 위한 유성찌꺼기탱크가 설치되어 있다:

The ship is provided with oil residue(sludge) tanks for retention of oil residues (sludge) on board as follows:

| 탱크 식별 기호
Tank
Identification | 탱크 배치(Tank Location) | | 용량
Volume
(m³) |
|------------------------------------|-----------------------------------|---------------------------|--------------------------------|
| | 늑골 (Frames)
부터 (from) ~까지 (to) | 측면 위치
Lateral Position | |
| | | | |
| | | | 총용량
Total Volume
_____m³ |

3.2 유성찌꺼기탱크에 저장된 유성찌꺼기의 처분 수단:

Means for the disposal of oil residues (sludge) retained in oil residue (sludge) tanks:

3.2.1 유성찌꺼기 소각기

Incinerator for oil residues (sludge)☐

3.2.2 유성찌꺼기를 태우기에 적합한 보조 보일러

Auxiliary boiler suitable for burning oil residues (sludge)☐

3.2.3 그 밖에 인정할 수 있는 수단, 방법을 표시할 것

Other acceptable means, state which☐

3.3 이 선박은 다음과 같이 선저폐수를 선내에 보유하기 위한 선저폐수저장탱크를 설치하고 있다.

The ship is provided with holding tank(s) for the retention on board of oily bilge water as follows.

1) 선저폐수저장탱크는 협약에서 요구되지 않으며, 설치되는 경우 제3.3항에 기입하여야 한다.

Oily bilge water holding tank(s) are not required by the Convention, if such tank(s) are provided they shall be listed in Table 3.3.

(21쪽 중 제9쪽)

| 탱크 식별 기호
Tank
Identification | 탱크 배치(Tank Location) | | 용량
Volume
(m³) |
|------------------------------------|------------------------------------|---------------------------|--------------------------------|
| | 늑골 (Frames)
부터 (from) ~ 까지 (to) | 측면 위치
Lateral Position | |
| | | | |
| | | | 총용량
Total Volume
_____m³ |

4. 표준 배출연결구(제13규칙)

STANDARD DISCHARGE CONNECTION(Regulation 13)

- 4.1 이 선박은 제13규칙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배출연결구를 부착하고 있고 기관구역의 선저폐수와 유성찌꺼기를 수용시설에 배출하기 위한 관을 비치하고 있다.

The ship is provided with a pipeline for the discharge of residues from machinery bilges and sludges to reception facilities, fitted with a standard discharge connection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3.□

5. 선상 기름/해양 오염 비상 계획(제37규칙)

SHIPBOARD OIL/MARINE POLLUTION EMERGENCY PLAN(Regulation 37)

- 5.1 이 선박은 제37규칙에 따라 기름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고 있다.

The ship is provided with a shipboard oil pollution emergency plan in compliance with Regulation 37.□

- 5.2 이 선박은 제37.3규칙에 따라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고 있다.

The ship is provided with a shipboard marine pollution emergency plan in compliance with Regulation 37.3.□

6. 면제

EXEMPTION

- 6.1 이 기록의 _____항의 항목에 대하여 협약 부속서 I 제3장의 요건은 제3.1규칙의 규정에 따라 주관청에 의하여 면제되어 있다.

Exemptions have been granted by the Administration from the requirements of Chapter 3 of Annex I of the Convention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3.1 on those items listed under paragraph(s) _____ of this Record.□

7. 동등물(제5규칙)

EQUIVALENTS(Regulation 5)

- 7.1 이 기록의 _____항의 항목에 대하여 협약 부속서 I 의 요건의 동등물이 주관청에 의하여 승인되어 있다.

Equivalents have been approved by the Administration for certain requirements of Annex I on those items listed under paragraph(s) _____ of this Record. □

8. 극지운항선박규칙의 Part II-A/1장의 준수

Compliance with part II-A – chapter 1 of the Polar Code

8.1 이 선박은 극지운항선박규칙의 Part II-A/1장의 1.2절 및 도입부의 환경 관련 규정의 추가
요건들을 준수하고 있다.

The ship is in compliance with additional requirements in the environment-related
provision of the Introduction and section 1.2 of chapter 1 of part II-A of the Polar
code.□

이 기록은 모든 점에서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is Record is correct in all respects.

_____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_____.

지방해양수산청장 ㉠

(Administrator of the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선급법인의 장 ㉠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IOPP증서) 추록(FORM B)

SUPPLEMENT TO THE INTERNATIONAL OIL POLLUTION PREVENTION CERTIFICATE(IOPP CERTIFICATE)

유조선용 위한 구조 및 설비의 기록

RECORD OF CONSTRUCTION AND EQUIPMENT FOR OIL TANKERS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및 같은 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부속서 I의 규정에 의합니다.

In respect of provisions of Annex I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1973, as modified by the Protocol of 1978 relating thereto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vention").

1. 선박의 중요 항목:

PARTICULARS OF SHIP:

1.1 선명:

Name of ship: _____

1.2 선박 번호 또는 호출부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_____

1.3 선적항:

Port of registry: _____

1.4 총톤수:

Gross tonnage: _____

1.5 선박의 화물적재용량:

(세제곱미터)

Carrying capacity of ship: _____ (m³)

1.6 선박의 재화중량톤수:

(톤)(제1.23규칙)

Deadweight of ship: _____ (tonnes) (Regulation 1.23)

1.7 선박의 길이:

(미터)(제1.19규칙)

Length of ship: _____ (m) (Regulation 1.19)

1.8 건조일:

Date of build: _____

1.8.1 건조 계약일

Date of building contract _____

1.8.2 용골이 거치 되거나 또는 그와 동등의 건조 단계에 도달한 날짜

Date on which keel was laid or ship was at a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_____

1.8.3 인도일

Date of delivery _____

1.9 주요 개조(적용되는 경우):

Major conversion(if applicable):

1.9.1 개조 계약일

Date of conversion contract _____

1.9.2 개조가 개시된 날

Date on which conversion was commenced _____

1.9.3 개조가 완료된 날

Date of completion of conversion _____

1.10 인도시 예기치 못한 지연:

Unforeseen delay in delivery:

- 1.10.1 인도가 예기치 못한 사유에 의하여 늦어져서 제1.28.1항의 규정에 따른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인도된 선박"이라고 주관청에 의하여 인정된 선박

The ship has been accepted by the Administration as a "ship delivered on or before 31 December 1979" under regulation 1.28.1 due to unforeseen delay in delivery ☐

- 1.10.2 인도가 예기치 못한 사유에 의하여 늦어져서 제1.28.3규칙에 따른 "1982년 1월 1일 이전에 인도된 유조선"이라고 주관청에 의해서 인정된 선박

The ship has been accepted by the Administration as an "oil tanker delivered on or before 1 June 1982" under regulation 1.28.3 due to unforeseen delay in delivery ☐

- 1.10.3 인도가 예기치 못한 사유에 의하여 늦어져서 제26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 선박

The ship is not required to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regulation 26 due to the unforeseen delay in delivery ☐

1.11 선박의 종류

Type of ship:

- 1.11.1 원유 유조선

Crude oil tanker ☐

- 1.11.2 석유 제품 유조선

Product carrier ☐

- 1.11.3 연료유나 제20.2규칙에 따른 중유, 또는 윤활유를 운송하지 않는 석유 제품 유조선

Product carrier not carrying fuel oil or heavy diesel oil as referred to in regulation 20.2, or lubricating oil ☐

- 1.11.4 원유/석유 제품 유조선

Crude oil/product carrier ☐

- 1.11.5 겸용선

Combination carrier ☐

- 1.11.6 유조선 외의 선박으로 협약 부속서 I 제2.2규칙에 규정하는 화물 탱크를 가진 선박

Ship, other than an oil tanker, with cargo tanks coming under Regulation 2.2 of Annex I of the convention ☐

- 1.11.7. 제2.4규칙에 규정하는 화물유를 운송하는 유조선

Oil tanker dedicated to the carriage of products referred to in Regulation 2.4 ☐

2. 기관구역의 선저폐수 및 연료유탱크로부터 기름 배출을 제어하기 위한 설비(제16규칙 및 제14규칙)

EQUIPMENT FOR THE CONTROL OF OIL DISCHARGE FROM MACHINERY SPACE BILGES AND OIL FUEL TANKS(Regulation 16 and 14)

2.1 연료유 탱크에 선박평형수의 적재 :

Carriage of ballast water in oil fuel tanks :

- 2.1.1 통상의 상황에서 연료유 탱크에 선박평형수를 적재할 수 있는 선박

The ship may under normal conditions carry ballast water in oil fuel tanks ☐

2.2 비치되어 있는 기름여과장치 종류:

Type of oil filtering equipment fitted:

- 2.2.1 기름여과장치(15ppm)(제14.6규칙)

Oil filtering(15ppm) equipment(Regulation 14.6) ☐

- 2.2.2 선저 폐수 농도 경보 장치 및 자동배출정지장치를 갖춘 기름여과장치(15ppm)(제14.7 규칙)

Oil filtering(15ppm) equipment with alarm and automatic stopping device(Regulation 14.7) ☐

2.3 승인 기준:

Approval standards:

- 2.3.1 유수분리/기름여과장치:

The separating/filtering system:

(21쪽 중 제 14쪽)

2.5.3 이 선박은 저장 탱크의 설치 대신 선저폐수를 혼합물탱크로 이송하기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In lieu of the holding tank the ship is provided with arrangements to transfer bilge water to the slop tank.

2A.1 이 선박은 제12A규칙에 따라서 건조될 것이 요구되며 다음의 요건에 적합하다 :

The ship is required to be constructed according to regulation 12A and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6항 그리고 7항이나 8항(이중선체구조)

paragraph 6 and either 7 or 8(double hull construction) □

11항(사고로 인한 연료유 유출성능 비율)

paragraph 11(accidental oil fuel outflow performance) □

2A.2 이 선박은 제12A규칙의 요건에 적합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The ship is not required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regulation 12A ☐

3. 유성찌꺼기의 저장 및 처리(제12규칙)와 선저 폐수저장탱크¹⁾

MEANS FOR RETENTION AND DISPOSAL OF OIL RESIDUES(SLUDGE)(Regulation 12) AND OILY BILGE WATER HOLDING TANK(S)¹⁾

3.1 이 선박에는 다음과 같이 유성찌꺼기의 저장을 위한 유성찌꺼기탱크가 설치되어 있다:

The ship is provided with oil residue(sludge) tanks for retention of oil residues (sludge) on board as follows:

| 탱크 식별 기호
Tank
Identification | 탱크 배치 (Tank Location) | | 용량
Volume
(m³) |
|------------------------------------|-----------------------------------|---------------------------|---------------------------------|
| | 늑골 (Frames)
부터 (from) ~까지 (to) | 측면 위치
Lateral Position | |
| | | | |
| | | | 총용량
Total Volume
_____ m³ |

3.2 유성찌꺼기탱크에 저장된 유성찌꺼기의 처분 수단:

Means for the disposal of oil residues (sludge) retained in oil residue (sludge) tanks:

3.2.1 유성찌꺼기 소각기

Incinerator for oil residues (sludge) ☐

3.2.2 유성찌꺼기를 태우기에 적합한 보조 보일러

Auxiliary boiler suitable for burning oil residues (sludge) ☐

3.2.3 그 밖에 인정할 수 있는 수단, 방법 등을 표시할 것

Other acceptable means, state which _____ ☐

3.3 이 선박은 다음과 같이 선저폐수를 선내에 보유하기 위한 선저폐수저장탱크를 설치하고 있다.

The ship is provided with holding tank(s) for the retention on board of oily bilge water as follows.

| 탱크 식별 기호
Tank
Identification | 탱크 배치 (Tank Location) | | 용량
Volume
(m³) |
|------------------------------------|----------------------------------|---------------------------|---------------------------|
| | 늑골 (Frames)
부터 (from)~까지 (to) | 측면 위치
Lateral Position | |
| | | | |
| | | | 총용량
Total Volume
m³ |

1) 선저폐수저장탱크는 협약에서 요구되지 않으며, 설치되는 경우 제3.3항에 기입하여야 한다.

Oily bilge water holding tank(s) are not required by the Convention, if such tank(s) are provided they shall be listed in Table 3.3.

4. 표준 배출연결구(제13규칙)

STANDARD DISCHARGE CONNECTION(Regulation 13)

- 4.1 이 선박은 제13규칙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배출연결구를 부착하고 있고 기관구역의 선저폐수와 유성찌꺼기를 수용시설에 배출하기 위한 관을 비치하고 있다.

The ship is provided with a pipeline for the discharge of residues from machinery bilges and sludges to reception facilities, fitted with a standard discharge connection in compliance with Regulation 13.□

5. 구조(제18규칙, 제19규칙, 제20규칙, 제21규칙, 제22규칙, 제23규칙, 제26규칙, 제27규칙, 제28규칙 및 제33규칙)

CONSTRUCTION(Regulation 18, 19, 20, 21, 22, 23, 26, 27, 28 and 33)

- 5.1 제18규칙의 요건에 따라 이 선박은 제18.9규칙에 따른 분리평형수탱크 요건에 적합한 유조선이다.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Regulation 18, the ship is qualified as a segregated tanker in compliance with regulation 18.9.□

- 5.2 제18규칙에 따른 분리평형수탱크는 다음과 같이 배치되어 있다:

Segregated ballast tanks(SBT) in compliance with regulation 18 are distributed as follows:

| 탱크
Tank | 용량(세제곱미터)
Volume(m³) | 탱크
Tank | 용량(세제곱미터)
Volume(m³) |
|------------|-------------------------|----------------------------------|-------------------------|
| | | | |
| | | 총 용량
Total
volume _____ m³ | |

5.3 원유 세정 설비:

Crude oil washing(COW):

- 5.3.1 이 선박은 제33규칙에 적합한 원유 세정 설비를 비치하고 있다.

The ship is equipped with a COW system in compliance with Regulation 33.□

- 5.3.2 이 선박은 제33규칙에 적합한 원유 세정 설비를 비치하고 있으나 그 유효성은 제33.1규칙 및 개정된 원유 세정설비의 명세서[결의 A.497(XII) 및 A.897(21)로 수정된 결의 A.446(XI)]의 4.2.10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된 것은 아니다.

The ship is equipped with a COW system in compliance with Regulation 33 except that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has not been confirmed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33.1 and paragraph 4.2.10 of the Revised COW Specifications[resolution A.446(XI) as amended by resolutions A.497(XII) and A.897(21)].□

- 5.3.3 이 선박은 _____년 _____월 _____일자의 유효한 원유 세정 설비 조작 및 설비 지침서를 비치하고 있다.

The ship has been supplied with a valid Crude Oil Washing Operation and Equipment Manual, which is dated _____.

- 5.3.4 이 선박은 개정된 원유 세정 설비의 명세서[결의 A.497(XII) 및 A.897(21)로 수정된 결의 A.446(XI)]의 안전 요건에 적합한 원유세정설비를 비치할 것이 요구되지 않으나 그 설비를 비치하고 있다.

The ship is not required to be but is equipped with COW in compliance with the safety aspects of Revised COW Specifications[resolution A.446(XI) as amended by resolutions A.497(XII) and A.897(21)].

5.4 화물창의 크기 및 배치의 제한(제26규칙):

Limitation of size and arrangements of cargo tanks(Regulation 26):

- 5.4.1 이 선박은 제26규칙의 요건에 따라 건조되도록 요구되어 있고 또한 동 규칙에 적합하다.

The ship is required to be constructed according to, and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Regulation 26.□

- 5.4.2 이 선박은 제26.4규칙의 요건에 따라 건조되도록 요구되어 있고 또한 동 규칙에 적합하다(제2.2규칙 참조).

The ship is required to be constructed according to, and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Regulation 26.4(See Regulation 2.2).□

5.5 구획 및 복원성(제28규칙):

Subdivision and stability(Regulation 28):

- 5.5.1. 이 선박은 제28규칙의 요건에 따라 건조되도록 요구되어 있고 또한 동 규칙에 적합하다.
The ship is required to be constructed according to, and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Regulation 28.□
- 5.5.2 제28.5규칙에서 요구되는 정보 및 자료는 승인된 양식으로 이 선박에 비치되어 있다.
Information and data required under Regulation 28.5 have been supplied to the ship in an approved form.□
- 5.5.3 이 선박은 제27규칙의 요건에 따라 건조되도록 요구되며 또한 동 규칙에 적합하다.
The ship is required to be constructed according to, and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Regulation 27.□
- 5.5.4 겸용선을 위한 제27규칙에서 요구되는 정보 및 자료는 주관청에 의해 승인된 문서로 이 선박에 비치되어 있다.
Information and data required under Regulation 27 for combination carriers have been supplied to the ship in a written procedure approved by the Administration.□
- 5.5.5. 이 선박은 제28(6)규칙에 적합한 승인된 복원성 계산기기가 설치되어 있다.
The ship is provided with an Approved Stability Instrument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28(6).□
- 5.5.6 이 선박은 제3.6규칙에 따르는 조건으로 제28(6)규칙이 면제된다. 복원성은 다음의 방법으로 검증한다.
The requirements of regulation 28(6) are waived in respect of the ship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3.6. Stability is verified by the following means:
- 1 제28(5)규칙에 따라 선장에게 제공된 복원성자료에 정의된 방식으로만 적하한다.
loading only to approved conditions defined in the stability information provided to the master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28(5)□
 - 2 주관청에 의해 승인된 방법으로 원격으로 검증한다.
verification is made remotely by a means approved by the Administration.□
 - 3 제28(5)규칙에 따라 선장에게 제공된 복원성자료에 승인된 적하범위 내에서 적하한다.
loading within an approved range of loading conditions defined in the stability information provided to the master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28(5)□
 - 4 제28(5)규칙에 따라 선장에게 제공된 복원성자료에 규정되어 있는 승인된 KG/GM값에 적합한 손상/비손상복원성 요건에 따라 적하한다.
loading in accordance with approved limiting KG/GM curves covering all applicable intact and damage stability requirements defined in the stability information provided to the master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28(5)□

5.6 이중선체구조:

Double hull construction:

- 5.6.1 이 선박은 제19규칙에 따라서 건조될 것이 요구되며 다음의 요건에 적합하다 :
The ship is required to be constructed according to Regulation 19 and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 1 제(3)항(이중선체구조)
paragraph(3)(double hull construction)□
 - 2 제(4)항(이중선체의 중간갑판구조유조선)
paragraph(4)(mid-height deck tankers with double side construction)
 - 3 제(5)항(해양환경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대체 방법)
paragraph(5)(alternative method approved by the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 5.6.2 이 선박은 제19.6규칙에 따라 건조될 것이 요구되며 그 요건에 적합하다.
The ship is required to be constructed according to and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Regulation 19.6.□
- 5.6.3 이 선박은 제19규칙의 요건에 적합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The ship is not required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Regulation 19.□

5.6.4 이 선박은 제20규칙을 적용받고,

The ship is subject to Regulation 20 and;

- .1 _____까지 제19규칙의 2항부터 5항까지, 7항 및 8항, 그리고 제28.6항과 관련하여 제28규칙에 적합할 것이 요구된다.
is required to comply with paragraphs 2 to 5, 7 and 8 of regulation 19 and regulation 28 in respect of paragraph 28.6 not later than _____. ☐
- .2 _____까지 제20.5규칙에 따라 계속적인 운항이 허용된다.
is allowed to continue operation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20.5 until _____. ☐
- .3 _____까지 제20.7규칙에 따라 계속적인 운항이 허용된다.
is allowed to continue operation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20.7 until _____. ☐

5.6.5 이 선박은 제20규칙을 적용받지 않는다.

The ship is not subject to Regulation 20 (check which box(es) apply).

- .1 이 선박은 재화중량톤수 5,000톤 미만이다.
The ship is less than 5,000 tonnes deadweight. ☐
- .2 이 선박은 제20.1.2규칙에 적합하다.
The ship complies with regulation 20.1.2. ☐
- .3 이 선박은 제20.1.3규칙에 적합하다.
The ship complies with regulation 20.1.3. ☐

5.6.6 이 선박은 제21규칙을 적용받고,

The ship is subject to Regulation 21 and;

- .1 _____까지 제21.4규칙에 적합할 것이 요구된다.
is required to comply with Regulation 21.4 not later than _____. ☐
- .2 _____까지 제21.5규칙에 따라 계속적인 운항이 허용된다.
is allowed to continue operation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21.5 until _____. ☐
- .3 _____까지 제21.6.1규칙에 따라 계속적인 운항이 허용된다.
is allowed to continue operation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21.6.1 until _____. ☐
- .4 _____까지 제21.6.2규칙에 따라 계속적인 운항이 허용된다.
is allowed to continue operation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21.6.2 until _____. ☐
- .5 _____까지 제21.7.2규칙에 따라 제21규칙의 조항은 면제된다.
is exempted from the provisions of regulation 21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21.7.2 until _____. ☐

5.6.7 이 선박은 제21규칙을 적용받지 않는다.

The ship is not subject to Regulation 21 (check which box(es) apply).

- .1 이 선박은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이다.
The ship is less than 600 tonnes deadweight. ☐
- .2 이 선박은 제19규칙에 적합하다(재화중량톤수 5,000톤 이상).
The ship complies with regulation 19 (Deadweight tonnes $\geq 5,000$). ☐
- .3 이 선박은 제21.1.2규칙에 적합하다.
The ship complies with regulation 21.1.2. ☐
- .4 이 선박은 제21.4.2규칙에 적합하다(재화중량톤수 600톤 이상 5,000톤 미만).
The ship complies with regulation 21.4.2 (600 $\leq$ Deadweight tonnes $< 5,000$). ☐
- .5 이 선박은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I 제21.2규칙에 정의된 "중질유"를 운송하지 않는다.
The ship does not carry "heavy grade oil" as defined in regulation 21.2 of MARPOL Annex I. ☐

- 5.6.8 이 선박은 제22규칙에 적용을 받고,
The ship is subject to regulation 22 and:☐
- .1 제22.2규칙의 요구조건에 적합하다.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regulation 22.2.☐
- .2 제22.3규칙의 요구조건에 적합하다.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regulation 22.3.☐
- .3 제22.5규칙의 요구조건에 적합하다.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regulation 22.5.☐
- 5.6.9 이 선박은 제22규칙을 적용받지 않는다.
The ship is not subject to regulation 22.☐
- 5.7 사고로 인한 기름유출 성능 요건 비율
Accidental oil outflow performance
- 5.7.1 이 선박은 제23규칙의 요건에 만족한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regulation 23.☐
6. 기름의 선내저유(제29, 31 및 32규칙)
RETENTION OF OIL ON BOARD(Regulation 29, 31, and 32)
- 6.1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Oil discharge monitoring and control system:
- 6.1.1 이 선박은 결의 A.496(XII) 또는 A.586(14)에서 정의된 _____유조선으로 분류된 것이다.
The ship comes under category _____oil tanker as defined in resolution A.496(XII) or A.586(14) .
- 6.1.2 이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는 결의 MEPC.108(49)에 따라 승인된 것이다.
The oil discharge monitoring and control system has been approved in accordance with resolution MEPC.108(49).☐
- 6.1.3 이 장치는 다음 것으로 구성된다:
The system comprises:
- .1 감시장치
control unit☐
- .2 연산장치
computing unit☐
- .3 계산장치
calculating unit☐
- 6.1.4 이 장치는 다음 것을 비치하고 있다:
The system is:
- .1 시동 연동 장치
fitted with a starting interlock☐
- .2 자동 배출 정지 장치
fitted with automatic stopping device☐
- 6.1.5 유분농도계는 다음의 기름에 적합한 것으로서 결의 A.393(X) 또는 A.586(14) 또는 MEPC.108(49)에 의하여 승인되었다:
The oil content meter is approved under the terms of resolution A.393(X) or A.586(14) or MEPC.108(49) suitable for:☐
- .1 원유
crude oil☐
- .2 중질 정제유
black products☐
- .3 경질 정제유
white products☐
- 6.1.6 이 선박은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를 위한 조작 지침서를 비치하고 있다.
The ship has been supplied with an operations manual for the oil discharge monitoring and control system.☐

6.2 혼합물탱크:

Slop tanks:

- 6.2.1 이 선박은 다음 규정에 따라__개의 혼합물탱크를 비치하고 있고, 그 총용량은 화물창 총 적재용량의__퍼센트에 해당하는__세제곱미터이다:

The ship is provided with_____dedicated slop tank(s) with the total capacity of _____m³ which is _____% of the oil carrying capacity, in accordance with:

.1 제29.2.3규칙

Regulation 29.2.3. ☐

.2 제29.2.3.1규칙

Regulation 29.2.3.1. ☐

.3 제29.2.3.2규칙

Regulation 29.2.3.2. ☐

.4 제29.2.3.3규칙

Regulation 29.2.3.3. ☐

- 6.2.2 화물 탱크가 혼합물탱크로 지정되어 있다.

Cargo tanks have been designated as slop tanks. ☐

6.3 유수경계면검출기:

Oil/water interface detectors:

- 6.3.1 이 선박은 결의 MEPC.5(X III)에 따라 승인된 유수경계면검출기를 비치하고 있다.

The ship is provided with oil/water interface detectors approved under the terms of resolution MEPC. 5(X III). ☐

6.4 제29, 31 및 32규칙의 면제:

Exemptions from Regulation 29, 31 and 32:

- 6.4.1 이 선박은 제2.4규칙에 따라 제29, 31 및 32규칙의 요건이 면제된다.

The ship is exempted from the requirements of Regulation 29, 31 and 32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2.4. ☐

- 6.4.2 이 선박은 제2.2규칙에 따라 제29, 31 및 32규칙의 요건이 면제된다.

The ship is exempted from the requirements of Regulation 29, 31 and 32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2.2. ☐

6.5 규칙의 면제:

Waiver of Regulation:

- 6.5.1 제31, 32규칙 요건은 제3.5규칙을 따르는 선박에 대해서는 면제된다.

이 선박은 다음의 항해에만 전적으로 종사한다.:

The requirements of Regulation 31 and 32 are waived in respect of the ship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3.5. The ship is engaged exclusively on:

.1 제2.5규칙의 특수 운송:

Specific trade under Regulation 2.5: ☐

.2 국제 특별 해역 내의 항해:

Voyages within special area(s): ☐

.3 국제 특별해역 외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50마일 이내이며 항해 기간이 72시간 이내로서 다음으로 제한된 항해:

Voyages within 50 nautical miles of the nearest land outside special area(s) of 72 hours or less in duration restricted to: ☐

7. 펌핑, 배관 및 배출 설비(제30규칙)

PUMPING, PIPING AND DISCHARGE ARRANGEMENTS(Regulation 30)

7.1 분리평형수의 선외 배출구는:

The overboard discharge outlets for segregated ballast are located:

7.1.1 홀수선 상부에 설치되어 있다.

above the waterline.□

7.1.2 홀수선 하부에 설치되어 있다.

below the waterline.□

7.2 배출용 매니폴드 이외의 맑은평형수의 선외 배출구는:

The overboard discharge outlets, other than the discharge manifold, for clean ballast are located :

7.2.1 홀수선 상부에 설치되어 있다.

above the waterline.□

7.2.2 홀수선 하부에 설치되어 있다.

below the waterline.□

7.3 배출용 매니폴드 이외의 오염된 평형수 또는 화물창구역으로부터 기름으로 오염된 물의 선외 배출구:

The overboard discharge outlets, other than the discharge manifold, for dirty ballast water or oil contaminated water from cargo tank areas are located:

7.3.1 홀수선 상부에 설치되어 있다.

above the waterline.□

7.3.2 제30.6.5규칙에 적합한 파트플로우 장치를 비치하고 홀수선 하부에 설치되어 있다.

below the waterline in conjunction with the part flow.
arrangements in compliance with Regulation 30.6.5.□

7.3.3 홀수선 하부에 설치되어 있다.

below the waterline.□

7.4 화물유펌프 및 화물유관으로부터의 기름의 배출(제30.4 및 30.5규칙):

Discharge of oil from cargo pumps and oil lines(Regulation 30.4 and 30.5):

7.4.1 화물유의 양하 완료 후 모든 화물유펌프 및 화물유관의 드레인을 배출하기 위한 방법

Means to drain all cargo pumps and oil lines at the completion of cargo discharge

.1 화물 탱크 또는 혼합물탱크에 배출할 수 있는 드레인 배출장치

drainings capable of being discharged to a cargo tank or slop tank□

.2 육상에 배출하기 위한 지름이 작은 관로가 비치되어 있다.

for discharge ashore a special small diameter line is provided.□

8. 선상기름/해양오염 비상계획(제37규칙)

SHIPBOARD OIL/MARINE POLLUTION EMERGENCY PLAN(Regulation 37)

8.1 이 선박은 제37규칙에 따라 기름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고 있다.

The ship is provided with a shipboard oil pollution emergency plan in compliance with Regulation 37.
.....□

8.2 이 선박은 제37.3규칙에 따라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고 있다.

The ship is provided with a shipboard marine pollution emergency plan in compliance with Regulation 37.3.
.....□

8A. 해상에서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제41규칙)

Ship-to-ship oil transfer operations at sea(regulation 41)

8A.1 이 유조선은 제41규칙에 적합한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를 비치하고 있다.

The oil tanker is provided with an STS operations Plan in compliance with regulation 41.□

9. 면제

EXEMPTION

9.1 이 기록의 ____항의 항목에 대하여 협약 부속서 I 제3장의 요건은 제3.1규칙에 따라 주관청에 의하여 면제되어 있다.

Exemptions have been granted by the Administration from the requirements of Chapter 3 of Annex I the convention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3.1 on those items listed under paragraph(s) ____ of this Record.□

10. 동등물(제5규칙)

EQUIVALENTS(Regulation 5)

10.1 이 기록의 ____항의 항목에 대하여 부속서 I의 요건의 동등물이 주관청에 의하여 승인되어 있다.

Equivalents have been approved by the Administration for certain requirements of Annex I on those items listed under paragraph(s) ____ of this Record.□

11. 극지운항선박규칙의 Part II-A/1장의 준수

Compliance with part II-A - chapter 1 of the Polar Code

11.1 이 선박은 극지운항선박규칙의 Part II-A/1장의 1.2절 및 도입부의 환경 관련 규정의 추가 요건들을 준수하고 있다.

The ship is in compliance with additional requirements in the environment-related provisions of the introduction and section 1.2 of chapter 1 of part II-A of the Polar code.□

이 기록은 모든 점에서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is record is correct in all respects.

_____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_____.

지방해양수산청장 ㉠
(Administrator of the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선급법인의 장 ㉠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_____



비자항무인바지선박의 국제기름오염방지 면제증서
INTERNATIONAL OIL POLLUTION PREVENTION EXEMPTION
CERTIFICATE FOR UNMANNED NON-SELF PROPELLED(UNSP)
BARGES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수정되고, 그 이후 개정된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_____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1973, as modified by the Protocol of 1978, as amended, relating thereto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vention")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by _____.

선박의 명세

Particulars of ship

| 선명
Name of Ship | 선박번호 또는 호출부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 선적항
Port of
Registry | 총톤수
Gross
Tonnage | 국제해사기구
(IMO)번호 ¹⁾
IMO Number ¹⁾ |
|--------------------|--|----------------------------|-------------------------|---|
| | | | | |

이 증서는 다음 사항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1. 이 비자항무인바지선박은 협약 부속서 I 제3.7규칙에 따라 검사를 받았음.;

That the UNSP barge has been surveyed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3.7 of Annex I to the Convention;

2. 검사의 결과 이 비자항무인바지선박은 아래의 요건에 적합함.:

That the survey shows that the UNSP barge:

- .1 기계적 수단에 의해 추진되지 않음
is not propelled by mechanical means;
- .2 기름을 운송하지 않음(협약 부속서 I의 제1.1규칙에 정의된);
carries no oil (as defined in regulation 1.1 of Annex I to the Convention);
- .3 기름을 사용하거나 유성찌꺼기를 발생시키는 기관이 설치되지 않음;
has no machinery fitted that may use oil or generate oil residue (sludge);
- .4 연료유탱크, 윤활유탱크, 선저폐수저장탱크 및 유성찌꺼기탱크가 설치되지 않음; 그리고
has no oil fuel tank, lubricating oil tank, oily bilge water holding tank and oil residue (sludge) tank; and
- .5 사람이나 살아있는 동물이 승선하지 않음; 그리고
has neither persons nor living animals on board; and

1) 국제해사기구에서 Resolution. A.1117(30)로 채택된 IMO 선박식별번호계획에 따를 것.
 In accordance with the IMO Ship Identification Number Scheme (resolution A.1117(30)).

3. 이 비자항무인바지선박은 협약 부속서 1의 제3.7규칙에 따라 협약 부속서 1의 제6.1규칙 및 제7.1규칙에서 요구하는 증서 및 관련 검사요건이 면제됨.

That the UNSP barge is exempted, under regulation 3.7 of Annex 1 to the Convention, from the certification and related survey requirements of regulations 6.1 and 7.1 of Annex 1 to the Convention.

이 증서는 면제의 조건이 유지되는 조건으로 _____년_____월_____일 까지 유효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_____day of _____ subject to the exemption conditions being maintained

증서 발행의 근거가 되는 검사가 완료된 날짜 : _____년_____월_____일

Completion date of the survey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 _____

_____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_____.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 (인)
(Administrator of the Regional Maritime Affairs & Fisheries Office)

한 국 해 양 교 통 안 전 공 단 이 사 장 (인)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선 급 법 인 의 장 (인)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

[별지 제26호서식] 삭제 <[2014.12.29.](#)>

[별지 제27호서식] 삭제 <[2014.12.29.](#)>

증서번호 제 _____ 호
Cert. No. _____

국 제 오 수 오 염 방 지 증 서

INTERNATIONAL SEWAGE POLLUTION PREVENTION CERTIFICATE(1973)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_____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1973, as modified by the Protocol of 1978 relating thereto, and as amend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vention")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by _____.

선박의 명세
Particulars of ship.

| 선명
Name of Ship | 선박번호 또는 호
출부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 선적항
Port of
Registry | 총톤수
Gross Tonnage | 최대승선인원
Number of persons which
the ship is certified
to carry | IMO 번호*
IMO Number* |
|--------------------|--|----------------------------|----------------------|--|------------------------|
| | | | | | |

신조선/현조선**

New /Existing ship**

협약 부속서 IV 제11.3규칙의 적용을 위한 선종:

Type of ship for the application of regulation 11.3 of Annex IV of the Convention:

신조 / 현존 여객선

New / existing passenger ship

여객선 이외의 선박

ship other than a passenger ship

용골의 거치일 · 이와 동등한 건조단계일 또는 해당되는 경우 주요 특성의 개조 · 변경 또는 수정작업의 시작일:

Date on which keel was laid or ship was at a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or, where applicable, date on which work for a conversion or an alteration or modification of a major character was commenced:

이 증서는 다음 사항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1. 이 선박은 다음과 같이 협약 부속서 IV 제9규칙 및 제10규칙에 따라 분뇨처리장치/분뇨마쇄소독장치/저장탱크** 및 배출관이 설치되어 있음:

That the ship is equipped with a sewage treatment plant/comminuter/holding tank** and a discharge pipeline in compliance with regulations 9 and 10 of Annex IV of the Convention as follows:

1.1 분뇨처리장치의 제원:**

Description of the sewage treatment plant:**

분뇨처리장치의 형식

Type of the sewage treatment plant; _____

제조사 명칭

Name of manufacturer;

이 분뇨처리장치는 해양환경보호위원회 결의서 2(VI)/159(55)**에 따른 유출액 기준에 적합함이 주관청에 의하여 증명됨

The sewage treatment plant is certified by the Administration to meet the effluent standards as provided for in resolution MEPC.2(VI)/159(55)**

이 분뇨처리장치는 4.2항의 기준을 포함/제외된* 해양환경보호위원회 결의서 227(64)**에 따른 유출액 기준에 적합함이 주관청에 의하여 증명됨

The sewage treatment plant is certified by the Administration to meet the effluent standards as provided for in the Guidelines on implementation of effluent standards and performance test for sewage treatment plants, adopted by resolution MEPC.227(64)**, as amended, including/excluding* the standard of section 4.2 thereof.

* IMO에서 Res. A.600(15)로 채택된 IMO 선박식별번호계획에 따른 것
In accordance with IMO ship identification number scheme, adopted by the Organization by resolution A.600(15).

** 해당되지 않는 것은 지울 것

법제처 as appropriate.

(제 2쪽)

1.2 분뇨마쇄소독장치의 제원:*

Description of comminuter:*

분뇨마쇄소독장치의 형식

Type of the comminuter: _____

제조자의 명칭

Name of manufacturer: _____

소독후의 분뇨의 기준

Standard of sewage after disinfection: _____

1.3 저장탱크설비의 제원:*

Description of holding tank equipment:*

저장탱크의 합계용량

Total capacity of the holding tank: _____ (m³)

위치

Location: _____

1.4 수용시설에의 오수를 배출하기 위한 표준육상연결구가 부착된 관

A pipeline for the discharge of sewage to a reception facility, fitted with a standard shore connection.

2. 이 선박은 협약의 부속서 IV 제4규칙에 따라 검사되었음.

That the ship has been surveyed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4 of Annex IV of the Convention.

3. 검사의 결과, 이 선박의 구조·설비·장치·부착물·배치 및 재료 그리고 그 상태가 모든 점에서 만족하며, 이 선박은 협약 부속서 IV의 적용 규정에 적합함.

That the survey shows that the structure, equipment, systems, fittings, arrangements and material of the ship and condition thereof are in all respects satisfactory and that the ship complies with the applicable requirements of Annex IV of the Convention.

이 증서는 협약 부속서 IV 제4규칙에 따라 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_____년 _____월 _____일** 까지 유효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_____ day of _____ subject to surveys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4 of Annex IV of the convention.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_____ on the _____ day of _____.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 (인)
(Administrator of the Regional Maritime Affairs & Fisheries
Office)한 국 해 양 교 통 안 전 공 단 이 사 장 (인)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선 급 법 인 의 장 (인)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 해당되지 않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협약 부속서 IV의 제8.1규칙에 따라 주관청에 의하여 정해진 만료일을 기재한다. 이 날짜의 월, 일은 협약 부속서 IV 제1.8규칙에서 정한 연차일과 같다.
Insert the date of expiry as specified by the Administration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8.1 or Annex IV of the Convention. The day and the month of this date correspond to the anniversary date as defined in regulation 1.8 of Annex IV of the Convention.

(제3쪽)

제8.3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증서의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일 때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certificate if valid for less
than 5 years where regulation 8.3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므로 협약 부속서 IV 제8.3규칙에 따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nd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8.3 of Annex IV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명
Signed: _____
일자
Date: _____
장소
Place: _____

정기 검사 완료 후 제8.4규칙이 적용되는 경우의 이서
Endorsement where the renewal survey has been completed and
regulation 8.4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므로 협약 부속서 IV 제8.4규칙에 따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nd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8.4 of Annex IV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명
Signed: _____
일자
Date: _____
장소
Place: _____

제8.5 또는 8.6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검사예정항에 도착시까지
또는 유예기간까지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validity of the certificate until reaching the
port of survey or for a period of grace where regulation 8.5 or 8.6 applies

이 증서는 협약 부속서 IV 제8.5* 또는 8.6*규칙에 따라 _____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
합니다.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8.5* or 8.6* of Annex IV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명
Signed: _____
일자
Date: _____
장소
Place: _____

* 해당되지 않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증서번호 제 _____ 호
Cert. No. _____

비자항무인바지선박의 국제오수오염방지 면제증서

INTERNATIONAL SEWAGE POLLUTION PREVENTION EXEMPTION

CERTIFICATE FOR UNMANNED NON-SELF-PROPELLED(UNSP) BARGES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_____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1973, as modified by the Protocol of 1978, as amended, relating thereto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vention")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by _____.

선박의 명세
Particulars of ship.

| 선명
Name of Ship | 선박번호 또는
호출부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 선적항
Port of
Registry | 총톤수
Gross Tonnage | 최대승선인원
Number of persons which
the ship is certified
to carry | IMO 번호
IMO Number ¹⁾ |
|--------------------|---|----------------------------|----------------------|--|------------------------------------|
| | | | | | |

이 증서는 다음 사항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 이 비자항무인바지선박은 협약 부속서 IV 제3.2규칙에 따라 검사를 받았음.;
That the unmanned non-self-propelled (UNSP) barge has been surveyed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3.2 of Annex IV to the Convention;
- 검사의 결과 이 비자항무인바지선박은 아래의 요건에 적합함:
That the survey shows that the unmanned non-self-propelled (UNSP) barge:
 - 기계적 수단에 의해 추진되지 않음;
is not propelled by mechanical means;
 - 사람이나 살아있는 동물이 승선하지 않음;
has neither persons nor living animals on board;
 - 운항중 분뇨를 저장하지 않음; 그리고
is not used for holding sewage during transport; and
 - 협약 부속서 IV 제1.3규칙에 정의된 생성하는 장치가 설치되지 않음; 그리고
has no arrangements that could produce sewage as defined in regulation 1.3 of Annex IV to the Convention; and
- 이 비자항무인바지선박은 협약 부속서 IV의 제3.2규칙에 따라 협약부속서 IV의 제4.1규칙 및 5.1규칙에서 요구하는 증서 및 관련 검사요건이 면제됨.
That the UNSP barge is exempted, under regulation 3.2 of Annex IV to the Convention, from the certification and related survey requirements of regulations 4.1 and 5.1 of Annex IV to the Convention.

1) 국제해사기구에서 Resolution. A.1117(30)로 채택된 IMO 선박식별번호계획에 따른 것.
In accordance with the IMO Ship Identification Number Scheme [resolution A.1117(30)].

(2쪽 중 2쪽)

이 증서는 면제의 조건이 유지되는 조건으로 _____년 _____월 _____일 까지 유효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_____ day of _____ subject to the
 exemption conditions being maintained.

증서 발행의 근거가 되는 검사가 완료된 날짜 : _____년 _____월 _____일
 Completion date of the survey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 _____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_____ on the _____ day of _____.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 (인)
 (Administrator of the Regional Maritime Affairs & Fisheries Office)
 한국 해양 교통 안전공단 이사장 (인)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선 급 법 인 의 장 (인)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

증서번호 제 _____ 호
Cert. No. _____



국제대기오염방지증서

INTERNATIONAL AIR POLLUTION PREVENTION(IAPP) CERTIFICATE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1978년 의정서 및 1997년 의정서에 따라 개정된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대한민국정부의 권한으로 _____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Protocol of 1997, as amended to ame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1973, as modified by the Protocol of 1978 related thereto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vention")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by _____.

| 선명
Name of Ship | 선박번호
또는 호출부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 선적항
Port of registry | 총톤수
Gross tonnage | 국제해사기구
(IMO) 번호
IMO Number |
|--------------------|---|-------------------------|----------------------|----------------------------------|
| | | | | |

이 증서는 다음 사항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1. 이 선박은 협약 부속서 VI의 제5규칙에 따라 검사를 받았음.

That the ship has been surveyed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5 of Annex VI of the Convention, and

2. 검사의 결과 이 선박의 설비, 장치, 부착물, 배치 및 재료는 이 협약의 부속서 VI의 해당 요건에 적합함.

That the survey shows that the equipment, systems, fittings, arrangements and materials fully comply with the applicable requirements of Annex VI of the Convention.

증서 발행을 위한 검사 완료일: _____년 _____월 _____일

Completion date of survey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 _____

이 증서는 협약 부속서 VI의 제5규칙에 따라 검사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_____년 _____월 일 까지 유효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_____ subject to surveys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5 of Annex VI of the Convention.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_____.

지방해양수산청장 ☐
(Administrator of the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선급법인의 장 ☐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

210mm×297mm(백상지 120g/m²)

제2종 중간 검사 및 제1종 중간 검사에 관한 이서
ENDORSEMENT FOR ANNUAL AND INTERMEDIATE SURVEYS

이 증서는 협약 부속서 VI의 제5규칙에 따라 요구되는 검사의 결과, 이 선박이 같은 부속서의 관련 규정
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

THIS IS TO CERTIFY that at a survey required by regulation 5 of Annex VI of the Convention,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at Annex:

제2종 중간 검사

Annual Survey: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일/월/년)

Date: _____

제2종 중간*제1종 중간*검사

Annual* / Intermediate* Survey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일/월/년)

Date: _____

제2종 중간* / 제1종 중간*검사

Annual* / Intermediate* Survey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일/월/년)

Date: _____

제2종 중간 검사

Annual Survey: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일/월/년)

Date: _____

* 해당되지 않으면 지울 것.

* Delete as appropriate.

(9쪽 중 제3쪽)

제9.8.3규칙에 따른 제2종 중간/제1종 중간 검사

Annual/intermediate survey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9.8.3

이 증서는 협약 부속서 VI 제9.8.3규칙에 따른 제2종중간*/제1종중간* 검사의 결과, 이 선박이 부속서의 관련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n annual*/intermediate* survey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9.8.3 of Annex VI of the Convention,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at Annex: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일/월/년)

Date: _____

증서의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일 때 제9.3규칙을 적용하여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certificate if valid for less than 5 years where regulation 9.3 applies

이 선박이 협약 부속서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므로, 부속서 VI 제9.3규칙에 따라 이 증서는 년____월____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Annex, and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9.3 of Annex VI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일/월/년)

Date: _____

정기검사 완료 후 제9.4규칙을 적용하여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where the renewal survey has been completed and regulation 9.4 applies

이 선박이 협약 부속서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므로, 부속서 VI 제9.4규칙에 따라 이 증서는 년____월____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Annex, and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9.4 of Annex VI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일/월/년)

Date: _____

* 해당되지 않으면 지울 것.

* Delete as appropriate.

(9쪽 중 제4쪽)

제9.5규칙 또는 제9.6규칙을 적용하여, 검사를 받기로 되어 있는 항만에 도착할 때까지 또는 유예기간까지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validity of the certificate until reaching the port of survey or for a period of grace where regulation 9.5 or 9.6 applies

이 증서는 협약 부속서 VI 제9.5규칙* 또는 제9.6규칙*에 따라 _____년____월____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9.5* or 9.6* of Annex VI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일/월/년)

Date: _____

제9.8규칙을 적용하여 연차일을 앞당기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for advancement of anniversary date where regulation 9.8 applies

이 협약의 부속서 VI 제9.8규칙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_____년____월____일 이다.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9.8 of Annex VI of the Convention, the new anniversary date is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일/월/년)

Date: _____

이 협약의 부속서 VI 제9.8규칙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_____년____월____일 이다.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9.8 of Annex VI of the Convention, the new anniversary date is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일/월/년)

Date: _____

* 해당되지 않으면 지울 것.

* Delete as appropriate.

국제대기오염방지증서 추록

SUPPLEMENT TO INTERNATIONAL AIR POLLUTION PREVENTION CERTIFICATE (IAPP CERTIFICATE)

구조 및 설비의 기록부

RECORD OF CONSTRUCTION AND EQUIPMENT

주: Notes:

1. 이 기록부는 IAPP 증서에 영구적으로 첨부되어야 한다. IAPP 증서는 언제나 선내에 비치해야 한다.
This Record shall be permanently attached to the IAPP Certificate. The IAPP Certificate shall be available on board the ship at all times.
2. 이 기록부는 한글과 영어로 작성한다.
The Record shall be in Korean and English.
3. 네모 빈 칸에는 답이 "예"와 "적용"인 경우에 "X"로, "아니오"와 "비적용"인 경우에 "-"로 적절히 표기해야 한다.
Entries in boxes shall be made by inserting either a cross (x) for the answer "yes" and "applicable" or a (-) for the answers "no" and "not applicable" as appropriate.
4. 별도로 기술하지 않으면, 이 기록부에서 규칙이란 협약 부속서 VI의 규칙을 말하며, 결의서나 회람이란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된 것을 말한다.
Unless otherwise stated, regulations mentioned in this Record refer to regulations of Annex VI of the Convention and resolutions or circulars refer to those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1. 선박의 주요 항목:

PARTICULARS OF SHIP:

1.1 선명:

Name of ship: _____

1.2 국제해사기구(IMO) 번호:

IMO number: _____

1.3 용골이 거치되거나 또는 이와 동등한 건조단계에 도달한 날짜:

Date on which keel was laid or ship was at a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_____

1.4 길이(L)* 미터:

Length(L)* metres: _____

2016년 1월 1일 이후 건조되고 여가활동 목적으로만 특별히 설계된 선박으로써, 제13.5.2.1 규칙 또는 제13.5.2.3규칙에 따라 제13.5.1.1규칙에 따른 NOx 배출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선박인 경우에만 작성한다.

Completed only in respect of ships constructed on or after 1 January 2016 that are specially designed, and used solely for recreational purposes and to which,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3.5.2.1 or regulation 13.5.2.3, the NOx emission limit as given by regulation 13.5.1.1 will not apply.

2. 선박으로부터 배출통제

CONTROL OF EMISSIONS FROM SHIPS

2.1 오존층파괴물질(제12규칙)

Ozone depleting substances(regulation 12)

2.1.1 2005년 5월 19일 전에 설치된 염화불화탄화수소(HCFCs)를 제외한 오존파괴물질을 포함하는 다음의 소화장치, 기타 장치 및 장비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The following fire extinguishing systems, other systems and equipment containing ozone depleting substances, other than hydro-chlorofluorocarbons(HCFCs), installed before 19 May 2005 may continue in service:

| 장치 또는 장비
System or equipment | 선내 위치
Location on board | 물질
Substance |
|---------------------------------|----------------------------|-----------------|
| | | |

- 2.1.2 2020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염화불화탄화수소(HCFCs)를 내장하고 있는 다음의 장치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The following system containing hydro-chlorofluorocarbons(HCFCs) installed before 1 January 2020 may continue in service:

| 장치 또는 장비
System or Equipment | 선내 위치
Location on board | 물질
Substance |
|---------------------------------|----------------------------|-----------------|
| | | |

2.2 질소산화물(NO_x) (제13규칙)
Nitrogen oxides(NO_x) (regulation 13)

- 2.2.1 이 선박에 설치된 다음의 디젤기관은 제13규칙의 해당 배출 기준을 만족한다.
The following marine diesel engines installed on this ship are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regulation 13, as indicated:

|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6의 해당 규칙
Applicable regulation of MARPOL Annex VI
(NTC = 질소산화물 기술 기준 2008)
(NTC = NO _x Technical Code 2008)
(AM = 승인된 방법)
(AM = Approved Method) | | | 기관 #1
Engine #1 | 기관 #2
Engine #2 | 기관 #3
Engine #3 | 기관 #4
Engine #4 | 기관 #5
Engine #5 | 기관 #6
Engine #6 |
|---|--|--|--------------------------|--------------------------|--------------------------|--------------------------|--------------------------|--------------------------|
| 1 | 제조사 및 모델
Manufacturer and model | | | | | | | |
| 2 | 제조 번호
Serial number | | | | | | | |
| 3 | 용도(적용 주기)
Use(applicable applied cycle(s) - NTC 3.2) | | | | | | | |
| 4 | 정격 출력 (kW)
Rated output(kW) (NTC 1.3.11) | | | | | | | |
| 5 | 정격 속도 (RPM)
Rated speed (RPM) (NTC 1.3.12) | | | | | | | |
| 6 | 설치일(일/월/년)
Identical engine installed ≥ 1/1/2000 exempted
by 13.1.1.2 | | | | | | | |
| 7 | 설치일(일/월/년)
Identical engine installation date (dd/mm/yyyy)
as per 13.1.1.2 | | | | | | | |
| 8a | 주요 개조일
(일/월/년)
Major conversion
(dd/mm/yyyy) | 13.2.1.1 및 13.2.2
13.2.1.1 & 13.2.2 | | | | | | |
| 8b | | 13.2.1.2 및 13.2.3
13.2.1.2 & 13.2.3 | | | | | | |
| 8c | | 13.2.1.3 및 13.2.3
13.2.1.3 & 13.2.3 | | | | | | |
| 9a | 배출기준 I
Tier I | 13.3
13.3 | ☐ | ☐ | ☐ | ☐ | ☐ | ☐ |
| 9b | | 13.2.2
13.2.2 | ☐ | ☐ | ☐ | ☐ | ☐ | ☐ |
| 9c | | 13.2.3.1
13.2.3.1 | ☐ | ☐ | ☐ | ☐ | ☐ | ☐ |
| 9d | | 13.2.3.2
13.2.3.2 | ☐ | ☐ | ☐ | ☐ | ☐ | ☐ |
| 9e | | 13.7.1.2
13.7.1.2 | ☐ | ☐ | ☐ | ☐ | ☐ | ☐ |

(9쪽 중 제7쪽)

| | | | | | | | | |
|-----|----------------------|---|--------------------------|--------------------------|--------------------------|--------------------------|--------------------------|--------------------------|
| 10a | 배출기준 II
Tier II | 13.4
13.4 | ☐ | ☐ | ☐ | ☐ | ☐ | ☐ |
| 10b | | 13.2.2
13.2.2 | ☐ | ☐ | ☐ | ☐ | ☐ | ☐ |
| 10c | | 13.2.2 (배출기준 III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13.2.2 (Tier III not
possible) | ☐ | ☐ | ☐ | ☐ | ☐ | ☐ |
| 10d | | 13.2.3.2
13.2.3.2 | ☐ | ☐ | ☐ | ☐ | ☐ | ☐ |
| 10e | | 13.5.2 (면제)
13.5.2 (Exemptions) | ☐ | ☐ | ☐ | ☐ | ☐ | ☐ |
| 10f | | 13.7.1.2
13.7.1.2 | ☐ | ☐ | ☐ | ☐ | ☐ | ☐ |
| 11a | 배출기준 III
Tier III | 13.5.1.1
13.5.1.1 | ☐ | ☐ | ☐ | ☐ | ☐ | ☐ |
| 11b | | 13.2.2
13.2.2 | ☐ | ☐ | ☐ | ☐ | ☐ | ☐ |
| 11c | | 13.2.3.2
13.2.3.2 | ☐ | ☐ | ☐ | ☐ | ☐ | ☐ |
| 11d | | 13.7.1.2
13.7.1.2 | ☐ | ☐ | ☐ | ☐ | ☐ | ☐ |
| 12 | 승인된 방법*
AM* | 도입됨
installed | ☐ | ☐ | ☐ | ☐ | ☐ | ☐ |
| 13 | | 상업적 이용 불가
not commercially
available at the
survey | ☐ | ☐ | ☐ | ☐ | ☐ | ☐ |
| 14 | | 적용제외
not applicable | ☐ | ☐ | ☐ | ☐ | ☐ | ☐ |

* 승인된 방법을 위한 가이드라인 2014 참조 (MEPC.243(66) 결의)

* Refer to the 2014 Guidelines on the approved method process (Resolution MEPC.243(66))

2.3 황산화물(SOx)과 미립자 (제14규칙)

Sulphur oxides(SOx) and particulate matter (regulation 14)

2.3.1 선박이 제14.3규칙에 규정된 배출규제해역 밖에서 운항할 때에는 다음을 사용한다:

When the ship operates outside of an Emission Control Area specified in regulation 14.3, the ship uses:

.1 연료유공급서에 따라 문서화되어 있는 바와 같이 황 함유량 제한치 0.5 %m/m를 초과하지 않는 연료유 및/또는:

fuel oil with a sulphur content as documented by bunker delivery notes that does not exceed the limit value of 0.50% m/m, and/or.....☐

.2 제2.6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제4.1규칙에 따라 승인된 동등한 설비를 사용하며, 이 설비는 0.50 %m/m 황 함유량 제한치의 연료유의 사용과 최소한 동등한 SOx 배출 저감 효과를 가짐:

an equivalent arrangement approved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4.1 as listed in paragraph 2.6 that is at least as effective in terms of SOx emission reductions as compared to using a fuel oil with a sulphur content limit value of 0.50% m/m.....☐

2.3.2 선박이 제14.3규칙에 규정된 배출규제해역 안에서 운항할 때에는 다음을 사용한다:

When the ship operates inside an Emission Control Area specified in regulation 14.3, the ship uses:

.1 연료유공급서에 따라 문서화되어 있는 바와 같이 황 함유량 제한치 0.10 %m/m를 초과하지 않는 연료유 및 / 또는:

(9쪽 중 8쪽)

fuel oil with a sulphur content as documented by bunker delivery notes that does not exceed the limit value of 0.10% m/m, and/or.....□

2.2 제2.6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제4.1규칙에 따라 승인된 동등한 설비를 사용하며, 이 설비는 0.10 %m/m 황 함유량 제한치의 연료유의 사용과 최소한 동등한 SOx 배출 저감 효과를 가짐:

an equivalent arrangement approved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4.1 as listed in paragraph 2.6 that is at least as effective in terms of SOx emission reductions as compared to using a fuel oil with a sulphur content limit value of 0.10% m/m□

2.3.3 제4.1규칙에 따라 승인된 동등한 설비가 제2.6항에 기재되어있지 않은 선박의 경우, 본선에 사용을 위해 운송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은 연료유공급서에 문서화된 바와 같이 0.50% m/m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For a ship without an equivalent arrangement approved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4.1 as listed in paragraph 2.6, the sulphur content of fuel oil carried for use on board the ship shall not exceed 0.50% m/m as documented by bunker delivery notes□

2.3.4 선박은 제14.10 규칙 또는 제14.11규칙에 따른 지정된 연료유 견본채취장소를 갖추고 있음:

The ship is fitted with designated sampling point(s)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4.10 or 14.11.....□

2.3.5 제14.12규칙에 따라, 연료유의 견본채취장소의 지정 또는 설치에 관한 제14.10규칙 및 제14.11 규칙의 요구사항은, 저인화점 연료나 가스 연료용 연료유 공급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않음: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4.12, the requirement for fitting or designating sampling point(s)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4.10 or 14.11 is not applicable for a fuel oil service system used for a low-flashpoint fuel or a gas fuel□

2.4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제15규칙)

Volatile organic compounds(VOCs) (regulation 15)

2.4.1 유조선은 MSC/Circ.585에 따라 승인되고 설치된 유증기수집제어장치를 갖추고 있다.

The tanker has a vapour collection system installed and approved in accordance with MSC/Circ.585.....□

2.4.2.1 원유를 운반하는 탱커의 경우, 승인된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가 있다.

For a tanker carrying crude oil, there is an approved VOC Management Plan.□

2.4.2.2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 승인 참조사항

VOC Management Plan approval reference:

2.5 선내소각기 (제16규칙)

Shipboard incineration (regulation 16)

선박은 다음의 소각기를 비치하고 있다:

The ship has an incinerator:

.1 다음 결의서의 기준에 따라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된 소각기
installed on or after 1 January 2000 which complies with:

. 1 결의서 MEPC.76(40) 및 개정사항

resolution MEPC.76(40), as amended*□

. 2 결의서 MEPC.244(66)

resolution MEPC.244(66)□

.2 다음 결의서의 기준에 따라 2000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소각기
installed before 1 January 2000 which complies with:

. 1 결의서 MEPC.59(33) 및 개정사항

resolution MEPC 59(33), as amended**□

. 2 결의서 MEPC.76(40) 및 개정사항

resolution MEPC 76(40), as amended*□

* 결의서 MEPC.93(45)에 의한 개정

As amended by Resolution MEPC.93(45)

** 결의서 MEPC.92(45)에 의한 개정

As amended by Resolution MEPC.92(45)

2.6 동등물 (제4규칙)

Equivalents (regulation 4)

이 선박은 이 부속서에 의해 요구되는 기준에 대한 대체수단으로서 다음의 부속품, 재료, 선박 또는 그 밖의 절차에서 갖추어야 할 기기나 장비, 대체연료유 또는 이행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The ship has been allowed to use the following fitting, material, appliance or apparatus to be fitted in a ship or other procedures, alternative fuel oils, or compliance methods used as an alternative to that required by this Annex:

| 장치 또는 장비
System or Equipment | 사용된 동등물
Equivalent used | 승인 참조
Approval reference |
|---------------------------------|----------------------------|-----------------------------|
| | | |

이 증서의 기록은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is Record is correct in all respects.

____년 ____월 ____일 _____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_____
(Place of issue of the Record) (Date of issue)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 (인)
(Administrator of the Regional Maritime Affairs & Fisheries Office)
한 국 해 양 교 통 안 전 공 단 이 사 장 (인)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선 급 법 인 의 장 (인)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

증서번호 제 _____ 호
Cert. No. _____

비자항무인바지선박의 국제대기오염방지 면제증서
INTERNATIONAL AIR POLLUTION PREVENTION EXEMPTION
CERTIFICATE FOR UNMANNED NON-SELF-PROPELLED(UNSP) BARGES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_____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1973, as modified by the Protocol of 1978, as amended, relating thereto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vention")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by _____.

선박의 명세
Particulars of ship.

| 선명
Name of Ship | 선박번호 또는
호출부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 선적항
Port of
Registry | 총톤수
Gross Tonnage | 최대승선인원
Number of persons which
the ship is certified
to carry | IMO 번호
IMO Number ¹⁾ |
|--------------------|---|----------------------------|----------------------|--|------------------------------------|
| | | | | | |

이 증서는 다음 사항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 이 비자항무인바지선박은 협약 부속서 VI 제3.4규칙에 따라 검사를 받았음.;
That the unmanned non-self-propelled (UNSP) barge has been surveyed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3.4 of Annex VI to the Convention;
- 검사의 결과 이 비자항무인바지선박은 아래의 요건에 적합함:
That the survey shows that the unmanned non-self-propelled (UNSP) barge:
 - 기계적 수단에 의해 추진되지 않음;
is not propelled by mechanical means;
 - 협약 부속서 VI에 의해통제되는 배기가스를 생성하는 시스템, 장비 및/또는 기계가 설치되지 않음; 그리고
has no system, equipment and/or machinery fitted that may generate emissions controlled by Annex VI to the Convention; and
 - 사람이나 살아있는 동물이 승선하지 않음;
has neither persons nor living animals on board;and
- 이 비자항무인바지선박은 협약 부속서 VI의 제3.4규칙에 따라 협약부속서 VI의 제5.1규칙 및 6.1규칙에서 요구하는 증서 및 관련 검사요건이 면제됨.
That the UNSP barge is exempted, under regulation 3.4 of Annex VI to the Convention, from the certification and related survey requirements of regulations 5.1 and 6.1 of Annex VI to the Convention.

1) 국제해사기구에서 Resolution. A.1117(30)로 채택된 IMO 선박식별번호계획에 따른 것.
In accordance with the IMO Ship Identification Number Scheme[resolution A.1117(30)].

(2쪽 중 2쪽)

이 증서는 면제의 조건이 유지되는 조건으로 _____년 _____월 _____일 까지 유효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_____ day of _____ subject to the
 exemption conditions being maintained.

증서 발행의 근거가 되는 검사가 완료된 날짜 : _____년 _____월 _____일
 Completion date of the survey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 _____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_____ on the _____ day of _____.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 (인)
 (Administrator of the Regional Maritime Affairs & Fisheries Office)
 한국 해양 교통 안전 공 단 이 사 장 (인)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선 급 법 인 의 장 (인)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1. 12. 23.>

(제1쪽)

증서번호 제 _____ 호
Cert. No. _____

국제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

ENGINE INTERNATIONAL AIR POLLUTION PREVENTION CERTIFICATE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1978년 의정서 및 1997년 의정서에 따라 개정된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대한민국정부의 권한으로 _____ 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Protocol of 1997, as amended, to ame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1973, as modified of the Protocol of 1978 related thereto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vention"),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by _____.

| 기관제조사
Engine
Manufacturer | 모델번호
Model
Number | 제조번호
Serial
Number | 시험주기
Test
Cycle(s) | 정격출력 및 속도
Rate Power(kW)
and Speed(rpm) | 기관승인번호
Engine Approval
Number |
|---------------------------------|-------------------------|--------------------------|--------------------------|---|-------------------------------------|
| | | | | | |

이 증서는 다음 사항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1. 위에 기재된 선박용 디젤기관은 협약 부속서 VI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질소산화물기술코드(2008)에 따라 최초 승인검사를 받았음.

That the above-mentioned marine diesel engine has been surveyed for pre-certif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Revised Technical Code on Control of Emission of Nitrogen Oxides from Marine Diesel Engines (2008) made mandatory by Annex VI of the Convention; and

2. 최초승인검사의 결과 기관의 설치 및/또는 선박을 항행에 사용하기 전에 기관, 기관부품, 조정 가능한 형상 및 기술기록이 협약 부속서 VI 제13규칙에 충분히 적합함.

That the pre-certification survey shows that the engine, its components, adjustable features, and Technical File, prior to the engine's installation and/or service on board a ship, fully comply with the applicable regulation 13 of Annex VI of the Convention.

이 증서는 대한민국정부의 권한아래 선박에 설치되고 협약 부속서 VI 제5규칙에 따라 검사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관의 일생동안 유효하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for the life of the engine subject to surveys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5 of Annex VI of the Convention, installed in ship under the authority of this Government.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_____
(Place of issue of the Record)_____
(Date of issue)

지방해양수산청장 인

(Administrator of the Regional Maritime Affairs & Fisheries Office)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인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한국선급 회장 인

(President of Korean Register of Shipping)

210mm × 297mm [보존용지(1종) 220g/㎡]

(제2쪽)

국제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추록
SUPPLEMENT TO ENGINE INTERNATIONAL AIR POLLUTION PREVENTION
CERTIFICATE (EIAPP CERTIFICATE)

구조, 질소산화물배출관련 기록부 및 검증 방법의 기록
RECORD OF CONSTRUCTION, TECHNICAL FILE AND MEANS OF VERIFICATION

주: Notes:

1. 이 기록과 첨부물은 EIAPP 증서에 영구적으로 첨부되어야 한다. EIAPP 증서는 기관이 사용되는 기간 내내 함께 보관되어야 하며 항상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This Record and its attachments shall be permanently attached to the EIAPP Certificate. The EIAPP Certificate shall accompany the engine throughout its life and shall be available on board the ship at all times.

2. 이 기록부의 기재사항은 영어로 작성한다.

The Record shall be in English.

3.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하면, 이 기록에 언급된 규칙은 협약의 부속서 VI의 규칙을 말하며 기관의 질소산화물배출관련 기록부에 대한 요건 및 검증방법은 개정된 질소산화물 기술코드(2008)의 강제이행요건을 적용한다.

Unless otherwise stated, regulations mentioned in this Record refer to regulations of Annex VI of the Convention and the requirements for an engine's Technical File and means of verifications refer to mandatory requirements from the Revised NOx Technical Code(2008)

1. 기관의 중요항목:

Particulars of the engine :

1.1 제조자의 명칭 및 주소:

Name and address of manufacturer: _____

1.2 기관제조장소:

Place of engine build: _____

1.3 기관제조일:

Date of engine build: _____

1.4 최초승인검사장소:

Place of pre-certification survey: _____

1.5 최초승인검사일:

Date of pre-certification survey: _____

1.6 기관의 형식 및 모델번호:

Engine type and model number: _____

1.7 기관제조번호:

Engine serial number: _____

- 1.8 만약 적용한다면, 이 기관은 기관 패밀리□ 또는 기관그룹□과 동등한 조건으로 생산된 표본기관□ 또는 소속기관□이다

If applicable, the engine is a Parent Engine□ or a Member Engine□ of the following Engine Family□ or Engine Group□.

1.9 개별 기관 또는 기관 패밀리/기관 그룹의 상세:

Individual Engine or Engine Family / Engine Group details:

1.9.1 승인 참조사항:

Approval reference: _____

(제3쪽)

- 1.9.2 정격출력(kW) 및 속도(rpm) 또는 범위 :
Rated Power(kW) and rated speed(rpm) values or ranges: _____
- 1.9.3 시험 주기:
Test cycle(s): _____
- 1.9.4 표본 기관의 시험연료유 사양:
Parent Engine(s) test fuel oil specification: _____
- 1.9.5 제13.3규칙□ 제13.4규칙□ 제13.5규칙□에 따라서 적용되는 NOx 배출허용기준:
Applicable NOx emission limit (g/kWh), reg.13.3□ 13.4□ 13.5.1□: _____
- 1.9.6 표본기관의 배출 값 (g/kWh):
Parent Engine(s) emission value (g/kWh): _____

2. 질소산화물배출관련 기록부의 중요 항목:
Particulars of the technical file

질소산화물기술코드의 제2장에 따라 요구되는 질소산화물배출관련 기록부는 EIAPP 증서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이며, 기관이 사용되는 기간 내내 함께 유지되어야 하며 선박에 항상 비치되어야 한다.
The Technical File, as required by Chapter 2 of the NOx Technical Code, is an essential part of the EIAPP Certificate and must always accompany an engine throughout its life and always be available on board a ship.

- 2.1 질소산화물배출관련 기록부의 식별/승인 번호:
Technical File identification/approval number: _____
- 2.2 질소산화물배출관련 기록부의 승인일:
Technical File approval date: _____

3. 선상 질소산화물 검증절차의 명세서:
Specifications for the On-board NOx Verification Procedures

질소산화물기술코드의 제6장에서 요구되는 선상 질소산화물 검증절차에 대한 명세서는 EIAPP 증서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이므로, 기관이 사용되는 기간 내내 함께 유지되어야 하며 선박에 항상 비치되어야 한다.
The specifications for the on-board NOx verification procedures, as required by Chapter 6 of the NOx Technical Code, are an essential part of the EIAPP certificate and must always accompany an engine throughout its life and always be available on board a ship.

- 3.1 기관 변수 점검 방법:
Engine Parameter Check method: _____
- 3.1.1 식별/승인 번호:
Identification/approval number: _____
- 3.1.2 승인일자(일/월/년):
Approval date: _____
- 3.2 직접 계측 및 감시 방법:
Direct Measurement and Monitoring method: _____
- 3.2.1 식별/승인 번호:
Identification/approval number: _____
- 3.2.2 승인일자(일/월/년):
Approval date: _____

대체방법으로 질소산화물기술코드의 제6.3항에 따른 단순화된 계측 방법이 이용될 수 있다.
Alternatively the Simplified Measurement method in accordance with 6.3 of the NOx Technical Code may be utilized.

(제4쪽)

____년 ____월 ____일 ____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_____
(Place of issue of the Record, Date of issue)

____지방해양수산청장 인
(Administrator of the Regional Maritime Affairs & Fisheries Office)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인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한국선급 회장 인
(President of Korean Register of Shipping)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9. 8.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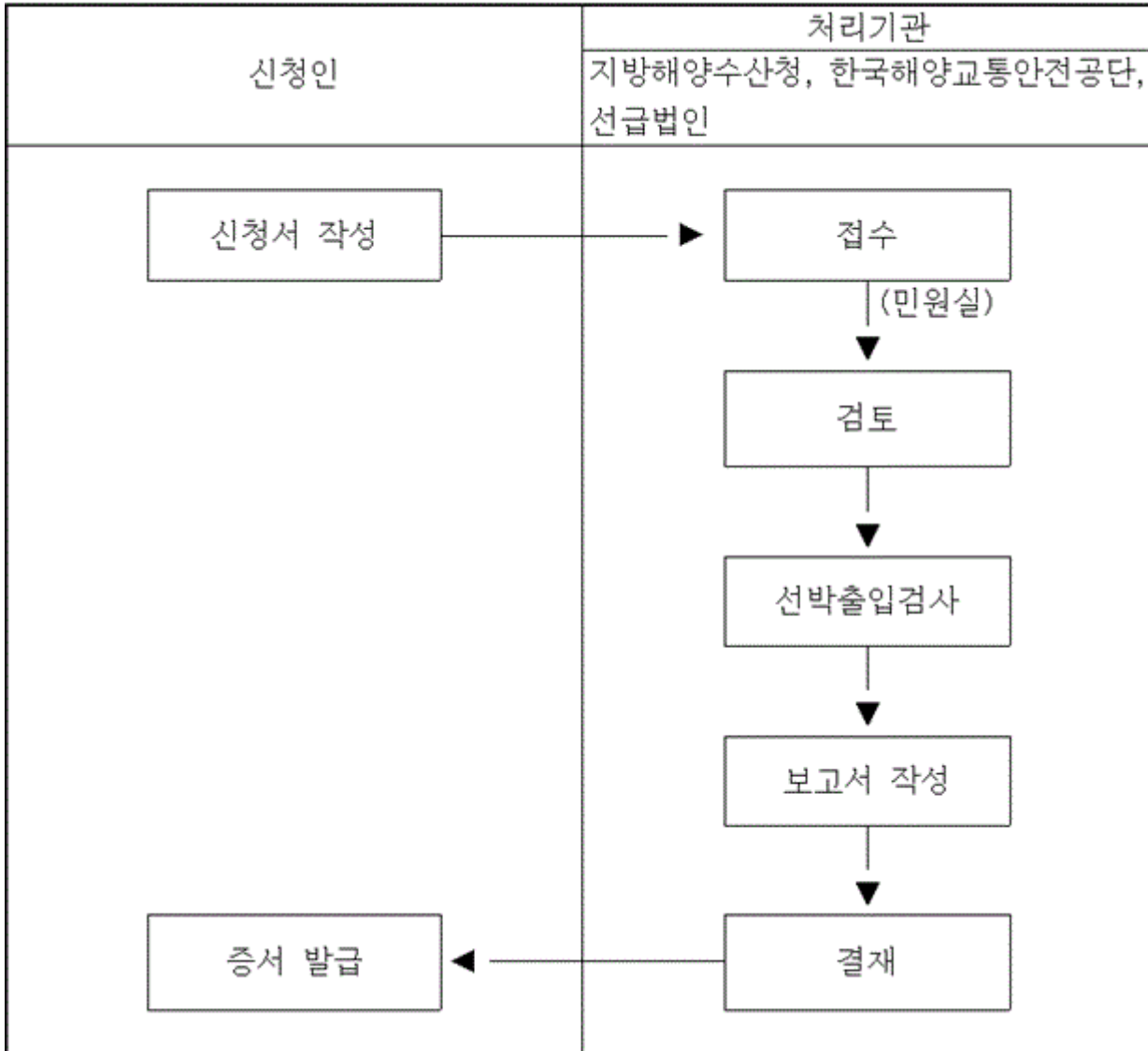
(앞쪽)

| | | | | |
|--|---------------|---------|---------------------|----------------------|
|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유효기간연장신청서 | | | | 처리기간 |
| | | | | 3일 |
| 선박소유자 | ① 명칭 또는
성명 | | ②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 | ③주소 | (전화 :) | | |
| ④ 선명 | | | ⑤ 용도 | |
| ⑥ 총톤수 | | | ⑦ 선박번호 | |
| ⑧ 증서의 종류
및 증서번호 | | | | |
| ⑨ 증서의 유효
기간 | | | | . . . 부터
. . . 까지 |
| ⑩ 운항예정일 | | | | |
| ⑪ 비고 | | | | |
| <p>위 선박의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협약검사증서)에 대하여 그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9조제3항에 따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p> <p>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p> <p>선급법인의 장 귀하</p> | | | | |
| 구비서류: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또는 협약검사증서 1부 | | | | 수수료 |
| | | | | 없음 |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31호의 2서식] <신설 2023. 9. 1.>

| | | | |
|---|---|----------|---|
| 제 호 | | | |
|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협약검사증서) 유효기간연장승인서 | | | |
| ①선 명 | | ②선 박 번 호 | |
| ③선 적 항 | | ④선 질 | 톤 |
| ⑤총 톤 수 | 톤 | ⑥용 도 | |
| ⑦현증서유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 ⑧연 장 된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 ⑨연 장 조 건 | (연장된 기간 내에 해당 선박이 검사받을 장소에 도착한 경우에는 검사 후의 기간에 대한 연장 효력은 상실됩니다.) | | |
| <p>「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효기간연장 승인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지방해양수산청장 (인)</p> <p style="text-align: center;">대한민국 영사 (인)</p> | | | |

210mm × 297mm(백상지 120g/m²)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5.1.8.>

형식승인[] 형식승인면제[]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 | | | | | |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5일 |
| 신청인 |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 한글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
| | 영문 | | | | |
| | 주소 | | | 전화번호 | |
| 품명 | | 한글 | | 영문 | |
| 형식 | | | | | |
| 영업소의 주소 및 명칭 | | 한글 | | | |
| | | 영문 | | | |
| 제작·제조소의 주소 및 명칭 | | 한글 | | | |
| | | 영문 | | |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3항,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 형식승인면제[]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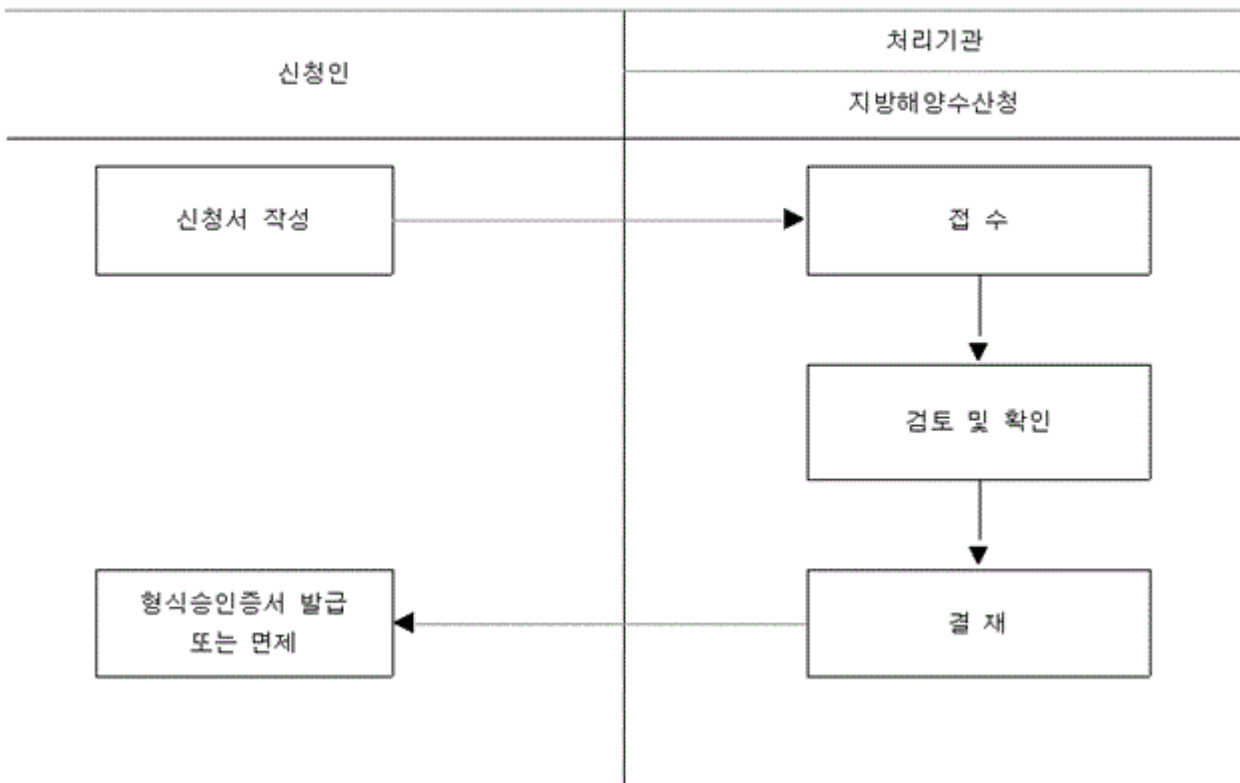
| | | |
|------|---|---|
| 첨부서류 | 1.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6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합격증명서
나. 설비 제조시설의 제조명세서 1부
다. 수입신고서 사본(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형식승인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가. 주요 제원에 관한 서류
나. 설비의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다. 수입신고서 사본(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라. 시험·연구 또는 개발 계획서 | 수수료
3,000원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납부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32호의2서식] <신설 2024. 6. 25.>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 | |
|--------------|-----------------------------|------|---------------|------------|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5일 |
| 신청인 |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 한글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 | | 영문 | | |
| | 주소 | | | 전화번호 |
| 변경승인
대상설비 | 품명 | | | |
| | 형식 및 용량 | | | |
| | 성능시험합격 증서번호 | | | |
| | 형식승인 증서번호 | |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 변경 후 | |
| | | | | |
| 변경사유 | | | |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3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5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6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합격증명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3,000원 |
| 처리절차 | | |
| 신청서 작성
신청인 | → 접수 | → 검토 및 확인 |
| | | → 결재 |
| | | → 형식승인증서 발급 |
| 처리기관: 지방해양수산청 | | |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4. 6. 25.>

(앞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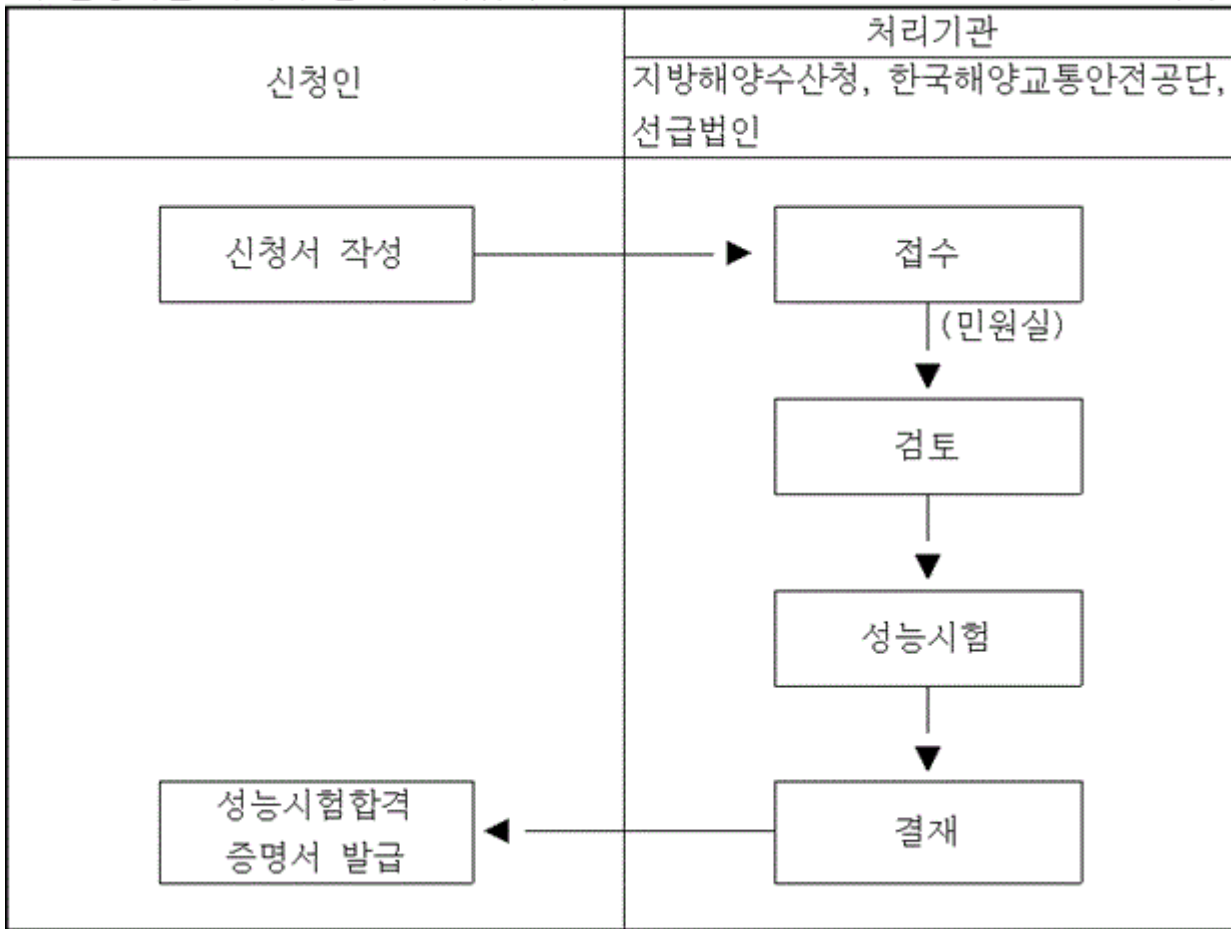
| | | |
|--|--|------------------|
| 성능시험신청서 | | 처리기간 |
| | | 25 일 |
| ① 품명 | | |
| ② 형식 | | |
| ③ 제작·제조소의 위치 및 명칭 | | |
| ④ 제작·제조연월일 | | |
| ⑤ 제작·제조번호 | | |
| ⑥ 성능시험을 받고자 하는 장소 | | |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5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div>

<div>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귀하
 선급법인의 장 귀하 </div> | | |
| 구비서류: 설비의 제조명세서·구조도면 및 작동설명서(형식승인사항의 변경을 위한 성능시험인 경우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을 첨부합니다) 각 1부 | | 수수료
별표 35에 따름 |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9. 8. 20.>

| | | |
|--|-----------|-----------|
| 제 호 | | 성능시험합격증명서 |
| ① 품명 | | |
| ② 형식 | | |
| ③ 설비용량 | | |
| 형식승인
신청자 | ④ 상호 및 주소 | |
| | ⑤ 성명 | |
| ⑥ 제작·제조소(영업소)의위치 | | |
| ⑦ 제작·제조연월 | | |
| ⑧ 제작·제조번호 | | |
| <p>「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5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6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지방해양수산청장 인</p> <p style="text-align: right;">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인</p> <p style="text-align: right;">선급법인의 장 인</p> | | |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220g/m²]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8. 5. 1.>

제 호
(Cert. No.)형식승인증서
(CERTIFICATE OF TYPE APPROVAL)

1. 제작자 또는 주된 영업소의 주소:
(Address of Manufacturer)
2. 제작자(수입자)의 성명:
(Name of Manufacturer of Importer)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3. 설비의 품명:
(Name of Article)
4. 설비의 형식 및 용량:
(Type & Capacity of Article)
5. 설비의 성능시험합격증명서
(Certificate of Performance Test)
번호:
(No. of Certificate & Test report)
발급연월일:
(Date of Issue)
6. 형식승인일:
(Date of Type Approval)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article has been examined and satisfactorily tes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MARPOL 73/78.)

년 월 일(. . .)

지방해양수산청장 인

Administrator of the Regional Maritime Affairs & Fisheries Office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220g/m²]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9. 8.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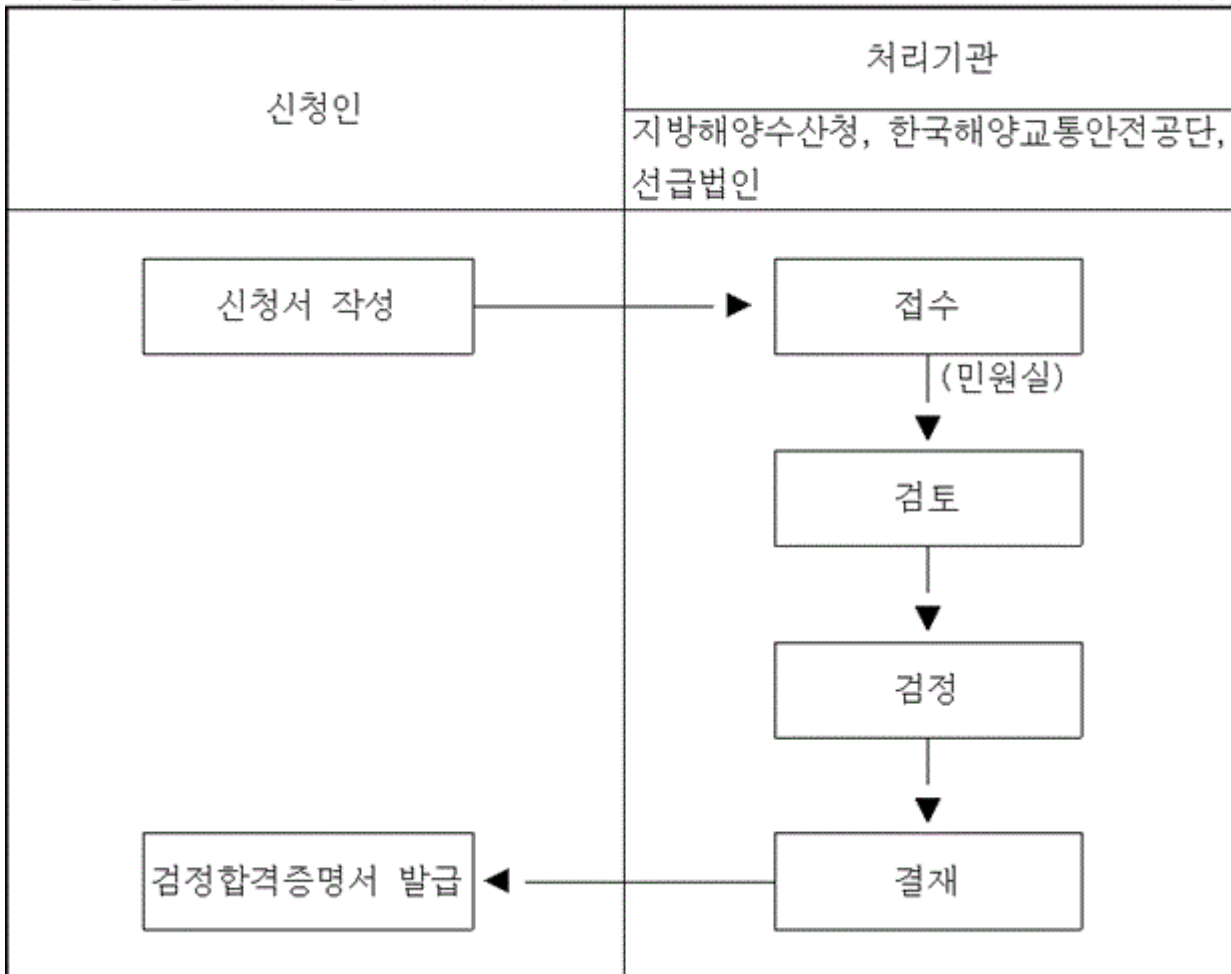
(앞쪽)

| | | | | |
|--|---------------------|--|--------------------|--|
| 검정신청서 | | | 처리기간 | |
| | | | 5일 | |
| ① 품명 | | | ② 형식승인번호 | |
| 신청인 | ③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 | ④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 ⑤ 주소 | | (전화번호:) | |
| ⑥ 형식 및 규격·용량 | | | ⑦ 수량 | |
| ⑧ 제작·제조소의 주소 및 명칭 | | | | |
| ⑨ 제작·제조연월일 | | | | |
| ⑩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장소 및 일자 | | | | |
| <p>「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6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선급법인의 장 귀하</p> | | | | |
| 구비서류: 없음 | | | 수수료 | |
| | | | 별표 35에 따름 | |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9. 8. 20.>

제 호
(Cert. No.)검정합격증명서
CERTIFICATE OF INSPECTION ON ARTICLE USED FOR
PREVENTION OF POLLUTION OF THE SEA

1. 품명:
(Name of Article)
2. 형식 및 규격:
(Type·Size·Capacity)
3. 수량:
(Quantity of Serial No.)
4. 형식승인번호:
(Type Approval No.)
5. 형식승인연월일:
(Date of Type Approval)
6. 제작(수입)자 성명:
(Name of Manufacturer or Importer)
7. 제작(수입)자 주소:
(Address of Manufacturer or Importer)
8. 제작(수입) 연월일:
(Date of Manufacture of Import)
9. 제작번호:
(No. of manufacture)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검정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under Paragraph 3 of Article 58 of the Regulation for Prevention of Pollution of the sea of the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 .)

지방해양수산청장 [인]
(Administrator of the Regional Maritime Affairs & Fisheries Office)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인]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선급법인의 장 [인]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220g/m²)]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37호의2서식] <개정 2018. 5. 1.>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법인 | 상호(사업장 명칭) 또는 법인명 | 성명(대표자) | |
|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 사업장 소재지 또는 법인 소재지 | | |
| 양도인, 피상속인, 합병 전 법인 | 상호(사업장 명칭) 또는 법인명 | 성명(대표자) | |
|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 사업장 소재지 또는 법인 소재지 | | |
| 권리·의무 승계일 | | | |
| 권리·의무 승계 사유 | | |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의3제2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신고인 제출서류 | 1. 양도·양수·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2. 형식승인증서의 사본 |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합병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 | | | | | | | | |
|---------------|---|-----|---|----------------------|---|-----|---|------------|
| 신고서 작성
신고인 | → | 접 수 | → | 검 토
처리기관: 지방해양수산청 | → | 결 재 | → | 통 보
신고인 |
|---------------|---|-----|---|----------------------|---|-----|---|------------|

210mm×297mm(백상지 80g/m²)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37호의3서식] <신설 2024. 6. 25.>

| | | |
|---|---|-------|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 해양오염방지설비
 ☐ 방오시스템
 ☐ 선박소각설비 </div> <div> ☐ 보완
 ☐ 교환 </div> <div>명령서</div> </div> | | |
| 형식승인의 내용 | 품 목 | |
| | 형 식 | |
| | 형식승인증서 번호 | |
| | 제작번호 | |
| 제조일 또는 수입일 | | |
|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대표자 이름 및
사업장 소재지 | | |
| 결함 내용 | | |
| 보완·교환의 기한 | ☐ 보 완 | 년 월 일 |
| | ☐ 교 환 | 년 월 일 |
| | ☐ 결함 발생의 원인이 된 부품의 보완·교환 | 년 월 일 |
| 비 고 | | |
| <p>「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12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오염방지설비, 방오시스템 또는 선박소각설비를 ☐ 보완, ☐ 교환할 것을 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해 양 수 산 부 장 관 <div style="display: inline-block; border: 2px solid red; width: 100px; height: 100px; vertical-align: middle; margin-left: 10px;"></div> 직인 </div> | | |

[별지 제37호의4서식] 삭제 <2018. 5. 1.>

[별지 제37호의5서식] 삭제 <2018. 5. 1.>

[별지 제37호의6서식] 삭제 <2018. 5.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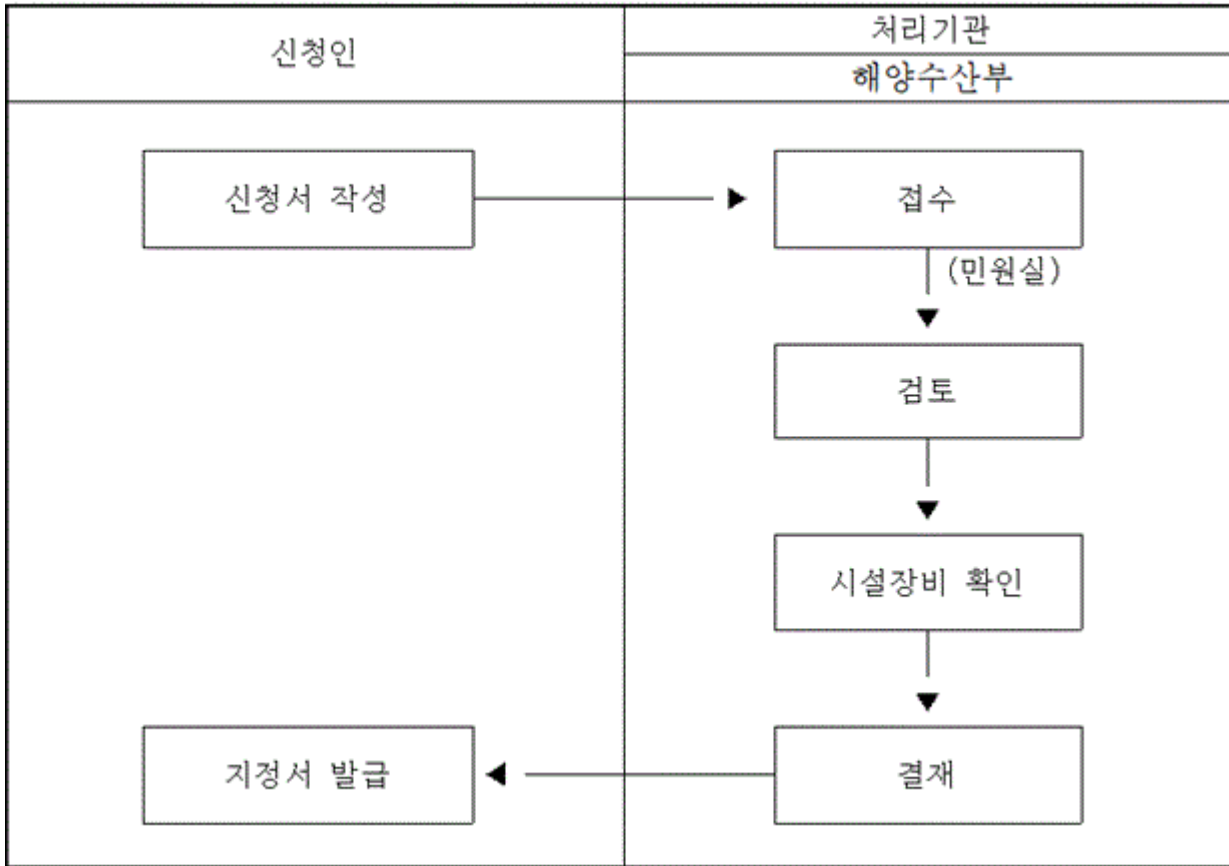
(앞쪽)

| | | | |
|---|--|---|-------------|
| 성능시험 · 검정 및 인정업무대행자지정신청서 | | | 처리기간
30일 |
| 신
청
인 | ① 명칭(상호) | | |
| | ② 성명(대표자) | ③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 | ④ 주소(사업장) | | |
| ⑤ 성능시험 및 검정을 대
행하고자 하는 방지 설
비의 종류 | | | |
| <p>「해양환경관리법」 제112조제3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62조제2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설비 성능시험 · 검정 및 인정에 관한 업무대행자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년 월 일 </p> <p style="text-align: right;">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p> <p style="margin-top: 20px;">해양수산부장관 귀하</p> | | | |
| 구
비
서
류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아니 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 수수료 |
| | 1.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2. 대행업무를 담당할 인력 · 시설 및 장비 현황 1부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명칭 · 소재지 1부
4. 대행업무의 수행을 위한 자체기준 1부
5. 수수료 기준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없음 |
|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신청인(대표자) : _____ (서명 또는 인) </p> | | | |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13.3.24>

| | | | |
|---|--------------------|--|---------------------|
| 지정번호 | 성능시험·검정 및 인정대행자지정서 | | |
| 제 호 | | | |
| 지정자 | ① 명칭(상호) | | |
| | ② 성명(대표자) | | ③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 ④ 주소(사무소) | | |
| ⑤ 성능시험 및 검정대행
설비의 종류 | | | |
| <p>「해양환경관리법」 제112조제3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62조제3항에 따라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해양수산부장관 [인]</p> | | | |

210mm × 297mm [보존용지(1종) 220g/m²]

해난관련법규

1.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2.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5.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2. 21.] [법률 제20600호, 2024. 12. 20.,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032 - 835 - 224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구조·구난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22. 6. 10., 2024. 1. 2.>

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 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
 - 나. 선박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6. “수난구호협력기관”이란 수난구호를 위하여 협력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7.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8.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10. “구조대”란 수색 및 구조활동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된 인원으로 편성되고 적절한 장비를 보유한 단위조직을 말한다.

11. “해양재난구조대원”이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촉된 해양재난구조대원을 말한다.
12. “표류물”이란 점유를 이탈하여 수상에 떠 있거나 떠내려가고 있는 물건을 말한다.
13. “침몰품”이란 점유를 이탈하여 수상에 가라앉은 물건을 말한다.

제2조의2(적용범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중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을 공유하는 경우로서 선박관리인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관리인에게 적용하고, 선박을 임차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임차인에게 적용하며, 선장에 관한 규정은 선장을 대신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상에서 발생한 모든 조난사고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7. 24.>

제2장 수난대비

제4조(수난대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수면에서 자연적·인위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수난구호를 위하여 수난대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수난대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수난대비집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른 수난대비집행계획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난대비기본계획과 제2항에 따른 수난대비집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5조(중앙구조본부 등의 설치) ①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수난구호협력기관과 수난구호민간단체 등이 행하는 수난구호활동의 역할조정과 지휘·통제 및 수난구호활동의 국제적인 협력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중앙구조본부를 둔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해역별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수난구호협력기관과 수난구호민간단체 등이 행하는 수난구호활동의 역할조정과 지휘·통제 및 수난현장에서의 지휘·통제를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에 광역구조본부를 두고, 해양경찰서에 지역구조본부를 둔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이하 “구조본부”라 한다)의 장은 신속한 수난구호를 위하여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④ 구조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 등) ① 중앙구조본부는 수상에서 자연적·인위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난구조협력기관 및 수난구조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매년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 범위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6조(각급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설치) ① 해양에서의 수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수색구조 관련 정책조정과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하 “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각각 중앙, 광역 및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 4. 13.>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4. 13.>

[제목개정 2021. 4. 13.]

제7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① 구조본부의 장은 해수면에서 수난구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조대를 편성·운영하고, 해수면과 연육로로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소방관서가 설치된 도서는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대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내수면에서의 수난구조를 위하여 구조대를 편성·운영하고,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대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수난구조협력기관의 장은 수난구조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조대 및 구급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는 수난구조 및 응급처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장비 및 조직체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① 구조본부의 장은 조난사고와 그 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의 발생에 대비하고,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전파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제9조(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작성 등)** ①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해운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여객선을 포함한다. 이하 “여객선”이라 한다) 소유자는 비상시 여객선의 수색구조를 위하여 구조본부의 비상연락망, 비상훈련계획 및 구명설비배치도 등이 기재된 계획서(이하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확인을 받아 해당 여객선 및 선박 소유자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4., 2016. 1. 27., 2017. 7. 26.>
- ② 여객선 소유자는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을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③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여객선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객선 소유자의 선박 또는 주된 사무소에 출입하여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④ 제3항에 따라 여객선 소유자의 선박 또는 주된 사무소에 출입하는 경찰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⑤ 여객선 및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선비상수색구조 훈련을 연 1회 이상 선장의 지휘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훈련의 시기와 방법은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 ⑥ 그 밖에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0조(선박의 이동 및 대피 명령) 구조본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의 이동 및 대피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이동 및 대피명령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 및 제3조에 따른 영해 및 내수(「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은 제외한다)에서만 실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1. 태풍, 풍랑 등 해상기상의 악화로 조난이 우려되는 선박
2. 선박구난현장에서 구난작업에 방해가 되는 선박

제11조(조난된 선박의 긴급피난) 인명이나 해양환경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조난된 선박의 선장 또는 소유자는 계속 항해 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긴급피난을 할 수 있다.

제12조(긴급피난의 신청과 허가) ① 긴급피난을 하려는 조난된 선박의 선장 또는 소유자는 구조본부의 장에게 긴급피난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피난의 허가신청을 받은 구조본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허가를 하는 경우 구조본부의 장은 조난된 선박이 초래할 수 있는 인명이나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조건을 붙여 허가를 할 수 있다.

③ 구조본부의 장은 해상기상 또는 선박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긴급피난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신청자에게 알리고, 선박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긴급피난의 신청·허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3장 수난구조

제13조(수난구조의 관할) 해수면에서의 수난구조는 구조본부의 장이 수행하고, 내수면에서의 수난구조는 소방관서의 장이 수행한다. 다만,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내수면 운항선박에 대한 수난구조는 구조본부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이 상호 협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수난구조협력기관과의 협조 등) ① 수난구조협력기관의 장은 수난구조활동을 위하여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으로부터 필요한 지원과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②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수난구조협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구조대 및 구급대의 합동훈련 또는 합동교육을 실시하거나 구조대 및 구급대에 관한 정보교환 및 상호연락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구조된 사람의 보호와 습득한 물건의 보관·반환·공매 및 구호비용의 산정·지급·징수, 그 밖에 사후처리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15조(조난사실의 신고 등) ① 수상에서 조난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 가까운 구조본부의 장이나 소방관서의 장에게 조난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1. 조난된 선박등의 선장·기장 또는 소유자
2. 수상에서 조난사실을 발견한 자
3. 조난된 선박등으로부터 조난신호나 조난통신을 수신한 자
4. 조난사고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

② 선박등의 소재가 불명하고 통신이 두절되어 실종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등의 소유자·운항자 또는 관리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구조본부의 장이나 소방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난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난지역을 관할하는 구조본부의 장이나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구조본부 등의 조치) ① 제15조에 따라 조난사실을 신고 또는 통보받거나 인지한 관할 구조본부의 장이나 소방관서의 장은 구조대에 구조를 지시 또는 요청하거나 조난현장의 부근

에 있는 선박등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등 수난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조의 지시 또는 요청을 받은 구조대의 장은 구조상황을 수시로 관할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보고 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난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수난구조협력기관의 장, 수난구조민간단체에게 소속 구조지원요원 및 선박을 현장에 출동시키는 등 구조활동(조난된 선박등의 예인을 포함한다)을 지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난구조협력기관의 장과 수난구조민간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생존자의 구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중 수색구조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건강이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제17조(현장지휘) ① 조난현장에서의 수난구조활동의 지휘는 지역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이 행한다. 다만, 응급의료 및 이송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수난구조협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지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행한다.<개정 2015. 7. 24.>

1. 조난현장에서의 수난구조활동
 2. 수난구조협력기관, 수난구조민간단체, 자원봉사자 등의 임무 부여와 인력 및 장비의 배치와 운용
 3. 추가 조난의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4.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5. 수난구조에 필요한 물자 및 장비의 관리
 6. 수난구조요원의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7. 현장접근 통제, 조난현장의 질서유지 등 효율적인 수난구조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광역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둘 이상의 지역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의 공동 대응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
- ④ 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의 수난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⑤ 조난현장에서 수난구조활동에 임하는 수난구조요원, 조난된 선박의 선원 및 승객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의 지휘·통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5. 7. 24.>

⑥ 구조본부의 장의 수난구조활동 지휘장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9. 8. 20.>

제18조(인근 선박등의 구조지원) ① 조난현장의 부근에 있는 선박등의 선장·기장 등은 조난된 선박등이나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으로부터 구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가능한 한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조난된 선박 또는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은 요청이 없더라도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②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으로부터 구조요청을 받은 선박등의 선장·기장 등은 구조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신고)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 조난된 선박등을 구난하려는 자는 구난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선박을 구난하려는 경우, 제16조제3항에 따른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요청으로 구난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긴급구난을 하려는 경우에는 구난작업을 시작한 후 지체 없이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6. 1. 27., 2017. 3. 21.>

1.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 및 제3조에 따른 영해 및 내수

2.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②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구난작업을 실시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된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후 다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및 서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12. 31.>

제19조의2(구난작업 현장의 안전관리 등)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구난작업 현장의 안전관리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난작업 관계자에게 인력 및 장비의 보장, 인근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한 조치 등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20조(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시 보험가입) 누구든지 조난된 선박등을 구난하려는 자는 안전사고 및 해양오염 발생에 대비하여 구난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구난작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조난된 선박등의 예인 시 책임) 조난된 선박등을 예인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인으로 인하여 조난된 선박등이 파손되거나 멸실되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경우 조난된 선박등을 예인하는 자는 피예인선의 선장이나 소유자에게 그 뜻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1. 수난구호민간단체에 소속된 선박이 제16조제3항에 따른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요청을 받고 예인하는 경우

2. 민간에 소속된 선박이 보수(실비의 지급은 보수로 보지 아니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예인하는 경우. 이 경우 실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한다.

3. 국가기관에 소속된 선박이 조난된 선박등을 긴급히 구난하기 위하여 예인하는 경우

제22조(외국구조대의 영해진입 허가 등) ① 외국의 구조대가 신속한 수난구조활동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의 영해·영토 또는 그 상공에의 진입허가를 요청하는 때에는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허가하고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입요청 및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해외 수난 발생 시 수색구조 등) ①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민과 선박등의 수난과 다른 나라 국민과 선박등의 수난에 대하여 수색·구조가 필요한 경우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구조대를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조대의 해외파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구조활동의 종료 또는 중지) 구조본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조활동을 종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구조활동을 완료한 경우
2. 생존자를 구조할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는 등 더 이상 구조활동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국내 조난사고의 조사)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에서 대규모의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관계 수난구조협력기관과 합동으로 사고조사단을 편성하여 사고원인과 피해상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단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 수난구조협력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수난구조협력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한국해양구조협회

제26조(한국해양구조협회의 설립 등) ① 해수면에서의 수색구조·구난활동 지원, 수색구조·구난에 관한 기술·제도·문화 등의 연구·개발·홍보 및 교육훈련,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해양 구조·구난 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해양 구조·구난 관계 종사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한국해양구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8. 12. 31.>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과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가운데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협회의 업무 등)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 7. 24., 2018. 12. 31.>

1. 수색구조·구난업무 지원
 2. 수색구조·구난기술에 관한 교육 및 조사·연구와 개발
 3. 수색구조·구난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4. 수색구조·구난기술에 관한 자문
 5.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6. 수색구조·구난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7. 수색구조·구난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8. 삭제 <2024. 1. 2.>
 9. 그 밖에 회원의 복리증진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회에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 [제목개정 2018. 12. 31.]

제28조(회원의 자격)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5. 7. 24., 2017. 10. 31., 2018. 12. 31., 2024. 1. 2.>

1. 「선박안전법」에 따라 설립된 선급법인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선박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른 선주상호보험조합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선주협회의 직원 가운데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3.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4. 수난구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운데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제5장 민간구조활동의 지원 등

제29조(수난구조를 위한 종사명령 등) ①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은 수난구조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사람 또는 단체를 수난구조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선박, 자동차, 항공기,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노약자, 정신적 장애인, 신체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난구조업무에의 종사명령을 받은 자는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수난구조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난구조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부상자 또는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의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1. 27.>
- ④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난구조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⑤ 제3항 본문에 따른 보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보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7.>
- ⑥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난구조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27., 2017. 3. 21.>

제30조(해양재난구조대원등의 처우) ①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처우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4. 1. 2.>

- ② 수난구조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대응 활동을 지원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18. 12. 31., 2021. 4. 13., 2024. 1. 2.>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제2항에 따른 수난구조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수난구조활동에 참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난구조활동 참여 소요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신설 2015. 7. 24., 2021. 4. 13., 2024. 1. 2.>
- ④ 삭제<2024. 1. 2.>
- ⑤ 삭제<2024. 1. 2.>
- ⑥ 삭제<2024. 1. 2.>
- ⑦ 제2항에 따른 수난구조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구조업무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치료 또는 보상금의 기준·절차 등은 제2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 7. 24., 2016. 1. 27., 2018. 12. 31., 2021. 4. 13., 2024. 1. 2.>

[제목개정 2024. 1. 2.]

- 제30조의2(수상구조사)**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고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4. 12. 20.>
- ② 수상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③ 수상구조사의 등급은 지도사·1급·2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업무수행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 12. 20.>
- ④ 해양경찰청장은 수상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구조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4. 12. 20.>
- ⑤ 수상구조사 자격의 효력은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개정 2024. 12. 20.>
- ⑥ 수상구조사 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30조의3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구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18. 12. 31., 2024. 12. 20.>
- ⑦ 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교육과정,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2. 31., 2024. 12. 20.>
- ⑧ 해양경찰청장은 수상구조사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18. 12. 31., 2024. 12. 20.>
- [본조신설 2015. 7. 24.]

제30조의3(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구조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8. 12. 31.>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 중독자
 4. 이 법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 가. 이 법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죄
 - 나. 「형법」 제268조(수상에서의 안전관리 및 인명구조 업무와 관련한 과실만 해당한다)의 죄
 -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②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수상구조사의 결격사유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31.>

③ 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통보방법 및 그 밖에 개인정보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8. 12. 31.>

[본조신설 2015. 7. 24.]

[제목개정 2018. 12. 31.]

제30조의4(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① 부정한 방법으로 수상구조사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수상구조사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수상구조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30조의5(준수사항) ① 수상구조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1. 구조 완료 후 구조된 사람에게 법령에 의하지 않은 금품 등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을 것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貸與)하지 않을 것

② 누구든지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5. 7. 24.]

[제목개정 2021. 4. 13.]

제30조의6(비밀 준수 의무) 수상구조사는 조난된 사람의 구조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30조의7(자격유지) ①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보수교육 기간”이라 한다)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4. 12. 20.>

1. 최초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제1호 이외의 경우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 대상자가 보수교육 기간 중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미리 받게 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1. 보수교육 기간 중 해외에 체류가 예정되어 있거나 체류 중인 경우 또는 재해·재난을 당한 경우

2.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3.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4. 군복무 중인 경우
 5. 그 밖에 보수교육 기간에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
-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보수교육 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부터 수상구조사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자격정지 후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자격의 효력이 다시 발생한다.
- ⑤ 해양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격 정지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자격정지 통보를 받은 사람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격증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 [본조신설 2015. 7. 24.]

제30조의8(자격의 취소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상구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2. 31., 2021. 4. 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2.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 자격이 정지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4.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제30조의6에 따른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수상구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격증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 [본조신설 2015. 7. 24.]

제30조의9(보험등의 가입) ① 교육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구조사 교육생과 그 종사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 여부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구조사 교육생과 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종전 제30조의9는 제30조의11로 이동 <2018. 12. 31.>]

제30조의10(보험등의 가입정보 요청)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30조의9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과 관련한 조사·관리를 위하여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11장제1절의 보험협회 등(이하 “보험협회등”이라 한다)에 보험등의 가입과 관련한 조사·관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보험협회등을 통하여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종전 제30조의10은 제30조의12로 이동 <2018. 12. 31.>]

제30조의11(권한의 위임)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0조의7, 제30조의8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7. 24.]

[제30조의9에서 이동 <2018. 12. 31.>]

제30조의12(심해잠수사의 양성 및 관리) ① 해양경찰청장은 심해(深海)에서의 잠수 및 수난구조를 전문으로 하는 심해잠수사의 양성 및 관리를 위하여 심해잠수구조훈련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17. 7. 26.>

② 해양경찰청장은 심해잠수사(해양재난구조대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잠수사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심해잠수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 2017. 7. 26., 2024. 1. 2.>

[본조신설 2015. 7. 24.]

[제목개정 2016. 1. 27.]

[제30조의10에서 이동 <2018. 12. 31.>]

제6장 조난통신

제31조(해상구조조정본부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1979년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과 「1944년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른 해상구조조정본부와 해상구조조정지부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해상구조조정본부와 그 지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고시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32조(조난통신의 수신) ①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장은 조난통신을 수신할 수 있는 통신시설을 갖추고 조난사실을 신속히 알 수 있도록 항상 조난통신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난통신을 청취할 통신망·주파수 등 조난통신의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선박위치통보 등) ① 선장은 선박이 항구 또는 포구로부터 출항하거나 해양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선박위치통보해역에 진입한 때에는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항해계획통보
2. 위치통보
3. 변경통보
4. 최종통보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여야 하는 선박의 범위, 통보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선박안전법」 제30조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항행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위치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34조(통신설비 등의 이용) ①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수난구조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청하거나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장 사후처리

제35조(구조된 사람·선박등·물건의 인계) ①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구조된 사람이나 사망자에 대하여는 그 신원을 확인하고 보호자 또는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유족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구조된 선박등이나 물건에 대하여는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인계할 수 있다.

②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구조된 사람이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인계받을 보호자 또는 유족이 없는 경우 및 구조된 선박등이나 물건의 소유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된 사람, 사망자, 구조된 선박등 및 물건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계한다.

③ 표류물 또는 침몰품(이하 “표류물등”이라 한다)을 습득한 자는 지체 없이 이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그 표류물등의 소유자가 분명하고 그 표류물등이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이 아닌 경우에는 습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그 소유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

제36조(구조된 사람의 보호 등) 제35조제2항에 따라 구조된 사람 등을 인계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구조된 사람에게 신속히 숙소·급식·의류의 제공과 치료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망자에 대하여는 영안실에 안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7조(인계된 물건의 처리) ① 제35조제2항에 따라 구조된 선박등 또는 물건을 인계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습득한 표류물등을 인도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난된 선박등의 선장·소유자·운항자 또는 관리자(이하 “선장등”이라 한다)나 물건의 소유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선장등이나 물건의 소유자에게 이를 인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인계받은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관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매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1. 멸실·손상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가격이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
2. 폭발물, 가연성의 물건, 보건상 유해한 물건, 그 밖에 보관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
3. 보관비용이 그 물건의 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인 것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공매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건의 소유자 또는 선장등에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고 물건을 인수하게 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매한다는 뜻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38조(구조된 사람의 구호비용) ① 구조된 사람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구조된 사람의 부담으로 한다.

② 구조된 사람은 제1항의 비용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구조된 사람이 제1항의 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망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조된 사람”은 “유족”으로 본다.

제39조(수난구호비용의 지급)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와 일시적으로 사용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임차인 또는 사용인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4.>

1. 구조된 선박등의 선장등 및 선원 등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난을 야기한 자
3. 정당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한 자

4. 조난된 물건을 가져간 자

② 제1항의 “수난구조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예인에 소요된 비용
2. 제29조제1항의 명령에 따라 조난된 선박등과 그 여객·승무원의 수난구조에 종사한 자의 노무에 대한 보수와 그 밖의 구조비용
3. 제29조제1항에 따른 선박·자동차·항공기·토지·건물, 그 밖의 물건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비용
4. 구조된 물건의 운반·보관 또는 공매에 소요된 비용

제40조(수난구조비용의 금액과 납부고지) ① 제39조의 수난구조비용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난구조비용의 금액을 조난 선박등의 선장등에게 고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조난된 선박등의 선장등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기간 내에 구조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장등이 보관하는 물건을 공매하여 그 대금으로 구조비용에 충당하고, 잔여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장등에게 이를 환급한다.

제41조(수난구조비용의 지급신청) 제39조에 따라 수난구조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조난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42조(이해관계인의 서류열람) 구조된 선박등의 선장등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수난구조비용에 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제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7. 24., 2017. 10. 31.>

1. 제1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난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단서에 위반하여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피해자를 죽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신설 2015. 7. 24.>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벌칙)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이 행하는 수난구호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제44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0조의5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수상구조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2. 제30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수상구조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본조신설 2021. 4. 13.]

제45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에 따른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수난구호업무에의 종사명령에 불응하거나 선박·자동차·항공기·토지·건물, 그 밖의 물건 등의 일시사용을 거부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12. 31.>

1. 제9조제1항에 따른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를 신고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5항에 따른 여객선비상수색구조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에 따른 이동 및 대피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구조요청을 받았을 때 지원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6. 제30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의 가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알린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1368호, 2012. 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난구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1>까지 생략

<672> 수난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5항·제6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9조제6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2항 및 제38조제3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67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844호, 2014. 11. 1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3>까지 생략

<244> 수난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해양경찰관서”를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2조제10호 및 제30조제1항 중 “해양경찰의”를 각각 “국민안전처의”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제1항·제2항 및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5항·제6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9조제6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2항 및 제38조제3항 후단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40조제1항 및 제41조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방재청장”을 “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24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440호, 2015. 7.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9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1항 후단 및 제56조 중 “ 「수난구조법」 ”을 각각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②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 「수난구조법」 ”을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③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중 “ 「수난구조법」 ”을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④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 「수난구조법」 ”을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난구조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920호, 2016. 1.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및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 대상에 관한 특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4·16세월호참사의 수난구조업무에 종사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제14605호, 2017. 3. 21.>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 「배타적 경제수역법」 ”을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4751호, 2017.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료 실시에 관한 특례) 제2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4·16세월호참사의 수난구조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 제29조제5항에 따른 보상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7>까지 생략

<268>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 해양경비안전관서 ”를 “ 해양경찰관서 ”로 한다.

제2조제11호 및 제30조제1항 중 “ 국민안전처의 ”를 각각 “ 해양경찰의 ”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의2제2항, 제2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3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30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0조의9, 제30조의10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제2항 및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국민안전처장관 ”을 각각 “ 해양경찰청장 ”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5항·제6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9조제6항, 제30조제2항, 제30조의2제3항·제5항, 제3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10제2항, 제33조제2항 및 제38조제3항 후단 중 “ 총리령 ”을 각각 “ 해양수산부령 ”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 국민안전처 ”를 “ 해양경찰청 ”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를 “ 지방해양경찰청 ”으로, “ 해양경비안전서 ”를 “ 해양경찰서 ”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 중 “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을 각각 “ 소방청장 ”으로 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40조제1항 및 제41조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26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006호, 2017. 10. 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12호, 2017. 10. 31.> (해양환경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16156호, 2018. 12. 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30조의2, 제30조의3제1항제2호, 제30조의8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60호, 2018. 12. 3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호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6511호, 2019. 8. 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60호, 2021. 4. 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58호, 2022. 6. 10.> (수상레저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9911호, 2024. 1. 2.>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해양재난구조대원”이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촉된 해양재난구조대원을 말한다.

제27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28조제3호 중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서”를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서”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민간해양구조대원등의 처우)”를 “(해양재난구조대원등의 처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수난구조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민간해양구조대원등”이라 한다)가 제1항에 따라”를 “수난구조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로 한다.

①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처우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제30조제3항 본문 중 “민간해양구조대원등이”를 “제2항에 따른 수난구조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민간해양구조대원등이”를 “제2항에 따른 수난구조참여자 중 해양

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로, “구조업무 및 구조 관련 교육훈련으로”를 “구조업무로”로 한다.

제30조의12제2항 중 “심해잠수사(민간해양구조대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잠수사를 포함한다)”를 “심해잠수사(해양재난구조대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잠수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제20600호, 2024. 12.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단체가 발급한 인명구조에 관한 자격 소지자의 수상구조사 자격 취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인명구조에 관한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이 법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특례시험을 거쳐 이 법에 따른 수상구조사 지도사 또는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제3조(수상구조사 자격 소지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은 제3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상구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8. 25.] [대통령령 제36625호, 2026. 8. 25.,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032 - 835 - 224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22.>

제2조(수난구조협력기관의 범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 1. 28., 2016. 1. 22.>

1. 삭제 <2016. 1. 22.>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이하 “대한적십자사”라 한다)는 제외한다]
3. 삭제 <2016. 1. 22.>
4. 삭제 <2016. 1. 22.>
5.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
6. 해양·수산·수난구조(水難救護) 관련 연구소
7. 그 밖에 수난구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

제3조(수난구조의 최우선 순위) 수난구조는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한다.

제2장 수난대비

제4조(중앙구조본부의 구성·운영)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구조본부(이하 “중앙구조본부”라 한다)에는 본부장·부본부장 각 1명과 중앙조정관 1명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중앙구조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은 해양경찰청장이 되고, 부본부장·중앙조정관 및 직원은 해양경찰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6. 1. 22., 2021. 10. 5.>

1. 수난구조대책의 총괄·조정

1의2.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수난대비기본훈련(이하 “수난대비기본훈련”이라 한다)의 실시

2.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대규모 수난구조활동의 현장 지휘·통제
3. 해수면에서의 수난구조업무(이하 “해양수난구조업무”라 한다)에 관한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4. 해양수난구조업무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과의 협력
5. 수난구조협력기관 등 관계 기관·단체의 구조대와의 합동훈련 및 합동수색·구조활동에 필요한 구조지침에 관한 사항
6.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수난대비집행계획(이하 “수난대비집행계획”이라 한다)의 시행
7. 수난구조장비의 확충·보급 등
8.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광역구조본부(이하 “광역구조본부”라 한다) 및 지역구조본부(이하 “지역구조본부”라 한다)의 지휘·감독
9. 그 밖에 해양수난구조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부분부장은 중앙구조본부의 장을 보좌하며, 중앙구조본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중앙조정관은 중앙구조본부의 장 및 부분부장을 보좌하고, 중앙구조본부의 장의 명을 받아 수난구조업무를 총괄하며, 중앙구조본부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의 구성·운영) ① 광역구조본부에는 본부장 1명과 광역조정관

1명을 두고, 지역구조본부에는 본부장 1명과 지역조정관 1명을 두며, 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 별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광역구조본부의 본부장(이하 “광역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지방해양경찰청장이 되고, 광역조정관 및 광역구조본부 직원은 해당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지역구조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해양경찰서장이 되고, 지역조정관 및 지역구조본부 직원은 해당 해양경찰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광역구조본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21. 10. 5.>

1. 광역구조본부 관할해역에서의 수난구조업무 총괄·조정·지휘 및 관계 기관, 외국기관과의 협력
2. 관할해역에서의 수난구조업무 수행
3. 소속 구조대의 편성·운영 및 구조활동에 관한 지휘·통제
4. 지역 소재 수난구조협력기관과 수난구조민간단체의 수난구조활동 역할 분담 및 지휘·통제
5. 법 제33조에 따른 선박위치통보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해양수난구조업무를 위한 지역 통신망의 관리·운용
7. 그 밖에 중앙구조본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거나 지시받은 사항
- ④ 지역구조본부의 장은 해양수난구조업무에 관하여 광역구조본부의 장의 조정·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21. 10. 5.>

1. 관할해역에서의 수난구조업무 수행

2. 소속 구조대의 편성·운영 및 구조활동에 관한 지휘·통제
3. 지역 소재 수난구조협력기관과 수난구조민간단체의 수난구조활동 역할 분담 및 지휘·통제
4. 그 밖에 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광역구조본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거나 지시받은 사항
- ⑤ 광역구조본부의 광역조정관 및 지역구조본부의 지역조정관은 소속 본부장을 보좌하고,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속 구조대 및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지역구조본부의 장은 수난구조에 필요한 구조대·장비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사무 등에 관하여 광역구조본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⑦ 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해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5조의2(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 등) ①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수난대비기본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 수난대비기본훈련계획을 수립하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수난구조협력기관 및 수난구조민간단체 등(이하 “훈련참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수난대비기본훈련의 목표
2. 훈련참여기관의 범위
3.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유형
4. 그 밖에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③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훈련참여기관이 아닌 선박소유자(여객선, 어선 등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에게 선박 및 해당 선박의 선장·선원 등을 수난대비기본훈련에 참여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수난대비기본훈련 실시 7일 전까지 훈련일시, 훈련장소, 훈련방법, 그 밖에 수난대비기본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훈련참여기관의 장(제3항에 따라 선박 및 해당 선박의 선장·선원 등이 수난대비기본훈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소유자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훈련 실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⑤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난대비기본훈련 참여자에게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수난대비기본훈련에 참여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훈련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난대비기본훈련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구조본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2.]

제5조의3(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결과 보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수난 대비기본훈련의 실시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1. 22.]

제6조(중앙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 해양수색구조기술 위원회(이하 “중앙기술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0. 5.>

② 중앙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구조본부의 부분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앙구조본부의 중앙조정관이 된다. <개정 2021. 10. 5.>

③ 중앙기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7. 22., 2017. 7. 26., 2021. 10. 5., 2024. 12. 3.>

1.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소방청、질병관리청、기상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앙구조본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 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의 회원이나 해양재난구조대원
 - 나. 다음의 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1) 선박 구조 및 설계 분야
- 2) 해상화물 분야
- 3) 해양기상 분야
- 4) 수중구조 및 구난 분야
- 5) 화재 분야
- 6) 감식(鑑識) 분야
- 7) 해상교통 분야
- 8) 의학, 법학, 심리학 또는 사회복지학 등 수난구조 관련 학문 분야
- 9) 그 밖에 수난구조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분야

다. 삭제 <2021. 10. 5.>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1. 10. 5.]

제6조의2(위원의 해촉 등) 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 22.]

제7조(광역 및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광역 해양수색 구조기술위원회(이하 “광역기술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0. 5.>

② 광역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역구조본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광역조정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5. 1. 6., 2018. 5. 8., 2021. 10. 5., 2024. 12. 3.>

1. 지방우정청, 국립검역소, 지방기상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항공청, 지방해양안전심판원, 해군함대사령부, 공군전투비행단, 광역시·도·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세관,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권역별질병대응센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대한적십자사,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해운조합의 지부 또는 출장소의 임직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의 회원, 해양재난구조대원, 선박 등의 소유자 중에서 광역 구조본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제6조제3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광역구조본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이하 “지역기술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1. 10. 5.>

④ 지역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조정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5. 1. 6., 2018. 5. 8., 2021. 10. 5., 2024. 12. 3.>

1. 우체국, 국립검역소 또는 국립검역소 지소, 지방기상청 또는 기상대,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 또는 출장소, 지방항공청, 지방해양안전심판원, 해군함대사령부, 공군전투비행단, 세관,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방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대한적십자사,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해운조합의 지부 또는 출장소의 임직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의 회원, 해양재난구조대원, 선박 등의 소유자 중에서 지역 구조본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제6조제3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2항제2호·제3호 및 제4항제2호·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 10. 5.>

[제목개정 2021. 10. 5.]

제7조의2(위원의 해촉 등) ①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 ② 광역구조본부의 장은 제7조제2항제2호·제3호에 따른 위원이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 10. 5.>
- ③ 제7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광역구조본부의 장”은 “지역구조본부의 장”으로 본다.<개정 2021. 10. 5.>
- [본조신설 2016. 1. 22.]

제8조(중앙기술위원회의 기능) ① 중앙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7. 22., 2017. 7. 26., 2021. 10. 5.>

1. 해양수난구조업무에 필요한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난대비기본계획(이하 “수난대비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수난대비집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인력·예산·물자·장비 및 시설 등의 지원을 위한 업무 협조
3. 해양수난구조업무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교환
4. 해양에서의 조난사고 발생 시 수색 범위·방법·기간, 자원 동원 및 사후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광역기술위원회 및 지역기술위원회(이하 “광역 및 지역 기술위원회”라 한다)와의 업무 협조
6. 해양에서의 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7.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외국구조대의 영해진입 허가 및 외국구조대에 대한 구조 지원에 관한 사항
8. 해양수난구조업무 관할해역의 조정 및 선박의 긴급피난업무에 관한 사항
9. 해양수난구조업무의 발전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10.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우리나라 구조대의 해외파견
11.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나 보상금액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2.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내수면 운항선박의 공동구조에 관한 구조기관 간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양수난구조업무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중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중앙기술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연구 등을 할 수 있다.<신설 2021. 10. 5.>

[제목개정 2021. 10. 5.]

제9조(광역 및 지역 기술위원회의 기능) ① 광역 및 지역 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10. 5.>

1. 수난대비기본계획에 따른 자체계획 수립·시행의 조정

2. 해양수난구호업무에 필요한 인력·물자·장비 및 시설 등의 지원을 위한 업무 협조
 3. 해양에서의 조난사고 발생 시 수색 범위·방법·기간, 자원 동원 및 사후처리 등에 관한 사항
 4. 해양수난구호업무에 필요한 교육·훈련
 5.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나 민간 해양구조대와의 구조 협력에 관한 사항
 6. 해양에서의 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해양수난구호업무와 관련하여 광역 및 지역 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광역 및 지역 기술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연구 등을 할 수 있다.<신설 2021. 10. 5.>
- [제목개정 2021. 10. 5.]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중앙기술위원회와 광역 및 지역 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술위원회를 대표하며, 기술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10. 5.>

- ② 기술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 10. 5.>

제11조(기술위원회의 회의 등) ① 중앙기술위원회의 회의는 해양경찰청장 또는 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광역 및 지역 기술위원회의 회의는 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1. 10. 5.>

- 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2021. 10. 5.>
- ③ 기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 10. 5.>
- ④ 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난구호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능별 또는 사안별로 관계 위원만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 10. 5.>
- ⑤ 중앙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기술위원회의 회의(제4항에 따른 회의를 포함한다)에서 의결된 사항을 필요한 경우에 사안별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1. 10. 5.>
- ⑥ 광역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역기술위원회의 회의(제4항에 따른 회의를 포함한다)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중앙구조본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지역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기술위원회의 회의(제4항에 따른 회의를 포함한다)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광역구조본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21. 10. 5.>

⑦ 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위원회에 부처진 안전의 사전검토 및 의결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락관 등 관계 기관의 실무담당자로 구성되는 실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5.>

[제목개정 2021. 10. 5.]

제12조(기술위원회의 사무 등) ① 기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기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21. 10. 5.>

② 기술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1. 10. 5.>

③ 기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1. 10. 5.>

[제목개정 2021. 10. 5.]

제12조의2(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중앙기술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책조정분과위원회 및 기술자문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기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③ 광역기술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기술위원회”는 각각 “광역기술위원회”로 본다.

[본조신설 2021. 10. 5.]

제13조(수당 및 여비) 기술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전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전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10. 5.>

제14조(기술위원회 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 10. 5.>

[제목개정 2021. 10. 5.]

제15조(연락관의 지정) ①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제6조제3항제1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광역구조본부의 장은 제7조제2항제1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구조본부의 장은 제7조제4항제1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해양수난구조업무에 관하여 해당 기관과의 연락 및 실무를 전담할 수 있는 연락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5.>

②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하 “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연락관과의 신속한 연락이 가능하도록 통신체제를 구축하고, 비상연락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구조대의 편성·운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1. 10. 5., 2024. 12. 3.>

1. 해양경찰구조대: 조난사고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 등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한 수색구조 활동을 위해 두는 구조대로서 해양경찰서마다 1개 이상 편성·운영. 다만,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또는 해양특수구조대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양경찰구조대를 편성·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2.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수면에서의 대형 조난사고, 화재선박의 인명구조 등 특수구조 상황에서 필요한 구조활동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관”이라 한다), 해양재난구조대원 등 해상 인명구조 종사자의 훈련을 위하여 두는 구조대로서 중앙구조본부에 편성·운영
 -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조본부의 장은 응급처치 시설을 갖춘 함정 및 항공기를 구급대로 편성·운영한다.
 - ③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급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1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자격 취득 및 유지를 위한 교육기관을 운영한다.

제17조(구조대 및 구급대 대원의 자격기준) ① 구조대의 대원은 해양경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구조업무를 위하여 특별채용된 사람
2.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인명구조 교육을 받은 사람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 ② 구급대의 대원은 해양경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5. 6. 20.>

1.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2. 「간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구급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제3장 수난구조

제18조(예인항해 사실 등의 통보) 구조본부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예인선 등 필요한 장비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조난된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을 예인항해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때에는 조난 선박등의 선장이나 소유자·운항자 또는 관리자(이하 “선장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소요비용 등에 관하여 서로 협의하게 해야 한다. 다만, 조난 선박등의 선장등을 알 수 없거나 긴급한 상황일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1. 5.>

[제목개정 2021. 1. 5.]

제19조(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청장이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수난)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의 수난”이란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하다고 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수난을 말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목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19조의2(수난구조활동 지휘장소)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수난구조활동 지휘장소는 신속한 수난구조 관련 정보의 수집·전파와 수난구조 자원의 관리·지원을 위한 방송 및 정보통신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 한다.

1. 조난현장 또는 조난현장 인근의 함정 등의 장소
2. 구조본부에 설치된 종합상황실 등의 장소

[본조신설 2019. 11. 12.]

제20조(소형선박의 구난)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선박”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른 폐기물·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의 산적운반(散積運搬)에 전용(轉用)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을 말한다.

제21조(조난 선박등 예인 시 실비의 범위) 법 제21조제2호 후단에 따른 조난 선박등 예인(曳引) 시 실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난 선박등의 예인에 소모된 유류비
2. 조난 선박등의 예인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에 소요되는 비용

제22조(외국구조대의 진입허가)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우리나라의 영해·영토 또는 그 상공에 진입하기 위하여 진입허가를 받으려는 외국구조대는 중앙구조본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일 때에는 무선통신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수난구조활동이 끝난 후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선박·항공기 등의 선명(船名)·기명(機名)·종류 및 번호
2. 활동목적
3. 활동수역·항로 및 일정
4. 구조대의 인원 및 주요 구조장비명
5. 그 밖에 양국 간 체결한 조약에 규정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진입허가를 하기 전에 중앙기술위원회를 개최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구조가 필요할 때에는 중앙기술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5.>

제23조(구조대의 해외파견)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구조대를 해외에 파견하려는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파견하는 선박·항공기 및 활동수역 등에 관하여 상대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전에 중앙기술위원회를 개최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구조가 필요할 때에는 중앙기술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5.>

③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 구조대를 해외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대규모 조난사고 합동조사단의 구성·운영) ①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대규모 조난사고를 합동으로 조사하는 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해양경찰관으로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조사단의 단장은 해양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조사단에 소속된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해양경찰청장은 재난 피해의 유형·규모에 따라 전문조사가 필요한 경우 전문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그 밖에 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4장 한국해양구조협회

제25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0. 5.>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협회 운영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수·임기 및 선임에 관한 사항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26조(협회의 운영) 협회의 운영경비는 회비와 사업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27조(감독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협회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협회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② 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28조(협회의 회원) 법 제2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해양·수산 관련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구난·조선·해양·수산 관련 회사·단체·기관 및 소속 직원
3. 해양경찰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수난구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5장 민간구조활동의 지원 등

제29조(수난구조업무 종사 제외자)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14세 미만인 사람
2.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 수난구조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0조(보상금 지급의 기준과 절차 등) 법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는 의사자유족, 의사상자의 보상금, 부상범위 및 등급, 부상등급별 보상금 등에 관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제6조, 제6조의2, 제8조, 제10조,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7. 22., 2026. 8. 25.>

[제목개정 2026. 8. 25.]

제30조의2(구조종사자에 대한 치료 절차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난구조업무에 종사한 사람(이하 “구조종사자”라 한다)이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치료를 받으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거쳐 조난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6. 8. 25.>

② 제1항에 따른 치료신청서(이하 “치료신청서”라 한다)를 받은 관할 시·도지사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해당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치료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치료받을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6. 8. 25.>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한 의료기관의 위치·의료기술 등이 신청인을 치료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

사에게 다른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 8. 25.>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할 시·도지사는 다른 의료기관의 재지정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6. 8. 25.>

⑤ 신청인이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 비용은 관할 시·도가 부담한다. 이 경우 국가는 시·도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6. 8. 2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호종사자 중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보상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한 치료 절차 또는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7. 22.]

[제목개정 2026. 8. 25.]

제30조의3(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수시로 실시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험 일시·장소 및 그 밖에 자격시험의 실시에는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2개월 전까지 해양경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6. 8. 25.>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대로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해양경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신설 2019. 7. 9., 2026. 8. 25.>

④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2019. 7. 9.>

[본조신설 2016. 7. 22.]

제30조의4(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등) ① 자격시험의 실시방법은 수상구조사 등급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상구조사 지도사: 면접시험

2. 수상구조사 1급 및 2급: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② 자격시험의 과목 및 과목별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③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수상구조사 등급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상구조사 지도사: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2. 수상구조사 1급: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필기시험에서 전 과목 총점의 8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나. 실기시험에서 각 과목마다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각각 득점할 것

3. 수상구조사 2급: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필기시험에서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나. 실기시험에서 각 과목마다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각각 득점할 것

[전문개정 2025. 12. 16.]

[제30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30조의4는 삭제<2025. 12. 16.>]

제30조의5(자격시험 수수료)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7. 22.]

[제30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30조의5는 제30조의4로 이동 <2025. 12. 16.>]

제30조의6(그 밖에 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 제30조의3부터 제30조의5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시험의 실시 절차나 방법, 시험과목 또는 평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7. 22.]

제30조의7(수상구조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및 업무수행 범위)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수상구조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및 업무수행 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5. 12. 16.]

[종전 제30조의7은 제30조의5로 이동 <2025. 12. 16.>]

제30조의8(자격시험 관리업무의 위탁)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0조의2제8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19. 7. 9., 2025. 12. 16.>

1.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2의2. 협회

3. 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전문기관 외에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하는 데 적합하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기관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7. 22.]

제30조의9(수상구조사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① 법 제30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8. 25.>

1. 보건복지부장관

2. 병무청장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육군의 각 군사령관 및 국군의무사령관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이하 “정신의료기관의 장”이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람이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개인정보는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수상구조사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로서 그 내용은 별표 1의3과 같다.<개정 2025. 12. 16.>

③ 제1항 각 호의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6개월마다 한 번 이상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7. 9.]

[종전 제30조의9는 제30조의11로 이동 <2019. 7. 9.>]

제30조의10(보험등의 가입)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30조의9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6.>

1. 가입기간: 교육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

2.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수상구조사 교육생과 교육기관의 종사자를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로 할 것

3. 가입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

②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의9제2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등에 관한 가입기간,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가입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7. 9.]

제30조의11(권한의 위임)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0조의11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 7. 26., 2019. 7. 9., 2023. 9. 12., 2025. 12. 16.>

1.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관리·감독

2.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증의 발급

3.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4. 법 제30조의8제1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의 정지 및 취소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0조의11에 따라 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7. 7. 26., 2019. 7. 9.>

[본조신설 2016. 7. 22.]

[제30조의9에서 이동 <2019. 7. 9.>]

제6장 조난통신

제31조(조난통신시설)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통신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수면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및 관련 의정서에 따른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1. 10. 5.>

1. 「전파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무선국으로서 선박과 무선통신할 수 있는 무선국 및 위성조난신호 수신장치로부터 해양수난구조업무에 관한 정보를 수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장치
2. 중앙구조본부로부터 해상조난에 관한 정보를 수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장치
3. 「전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해안국(이하 “해안국”이라 한다)에서 수신한 조난 및 선박의 위치 통보에 관한 정보를 수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장치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조난통신의 청취를 위하여 필요한 주파수 및 통신설비는 「선박안전법」 제2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조난통신망의 구축) ①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조난통신을 수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간에 대한 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5.>

1. 해안국 및 「전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2호에 따른 해안지구국과 중앙구조본부 간
2. 위성조난신호 수신장치와 중앙구조본부 간
3. 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 및 지정된 구조대와 중앙구조본부 간
4. 수난구조협력기관·단체와 중앙구조본부 간
5. 그 밖에 조난통신망 구성에 필요한 구간

②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난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제7장 사후처리

제33조(구조된 사람 등의 인계) ①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구조된 사람, 사망자, 구조된 선박등 및 물건을 인계할 때에는 수난구조현장에서 명단 또는 목록을 작성하여 확인한 후에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7. 9., 2026. 8. 25.>

② 제1항에 따른 인계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난지역을 관할하는 시장등으로 하고, 관할 시장등이 불분명할 때에는 조난지 또는 수난구조 현장 인근의 인계가 용이한 항구 또는 포구를 관할하는 시장등으로 한다. <개정 2026. 8. 25.>

제34조(표류물 및 침몰품의 제출) ① 표류물 또는 침몰품(이하 “표류물등”이라 한다)을 습득한 자(이하 “습득자”라 한다)는 법 제3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그 표류물등을 습득한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습득자는 표류물등의 운반 또는 인도에 어려움이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까운 해양경찰서(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경찰서(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소방서(119안전센터、119구조대、119구급대 및 119지역대를 포함한다)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표류물등을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표류물등을 인도받은 해양경찰서장 등은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장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6. 8. 25.>

③ 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 후단에 따라 인도받은 표류물등이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이거나 소유자가 폐기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즉시 습득자에게 반환하거나 직권으로 폐기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6. 8. 25.>

제35조(표류물등의 보관 및 보관사실의 공고) 법 제3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표류물등의 보관 및 대금 보관사실의 공고에 관하여는 「유실물법 시행령」 제1조제2항、제3항 및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등”으로,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로 본다. <개정 2026. 8. 25.>

제36조(표류물등의 반환) ① 시장등은 법 제3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인도받은 표류물등을 소유자에게 인도할 때에는 그 표류물등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표류물등의 소유자인 사실과 소유자의 이름、주소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25.>

② 시장등이 제1항에 따라 표류물등을 소유자에게 인도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습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수령기한은 통지를 한 날부터 1개월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25.>

1. 보상금액
2. 수령기한
3. 수령상의 유의사항 및 수령기한 안에 수령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는 뜻

제37조(공매) ① 법 제37조제3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른 공매의 방법과 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일반재산의 매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빨리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물건은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일반인의 소유 또는 소지가 제한되어 있거나 금지되어 있는 물건은 해당 법령에 따라 이를 적법하게 소유 또는 소지할 수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제38조(구조비용의 국고 지급) 시장등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구조된 사람의 보호조치 등에 소요된 비용을 국고로부터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지급신청서에 비용계산서를 첨부하여 해당 조난사고를 수습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 8. 25.>

제39조(수난구조비용의 지급신청) 시장등은 법 제39조에 따른 수난구조비용을 지급할 때에는 1개월 이상의 청구기간을 정하여 수난구조비용을 청구할 것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난구조비용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를 알 때에는 따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25.>

제40조(수난구조비용의 금액) 시장등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수난구조비용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구조작업의 종류, 작업시간, 위험의 정도와 시설이나 물건의 사용시간, 손실 유무 등에 따른 해당 지역의 관례적인 보상액 및 임금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6. 8. 25.>

제4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경찰청장(제30조의8 및 제30조의11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및 제5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19. 7. 9., 2022. 12. 20., 2025. 12. 16.>

1.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무
 2. 법 제30조의2제4항, 제30조의7제5항 및 제30조의8제3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증 발급 및 자격증 반납에 관한 사무
 3. 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무
 4. 법 제30조의7제4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의 정지에 관한 사무
 5. 법 제30조의8제1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의 취소에 관한 사무
- [본조신설 2016. 7. 22.]

제8장 벌칙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7. 9.>

부칙 <제24066호, 2012. 8.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9조제2호의 개정규정 중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은 2013년 6월 30일까지는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 로 본다.

② 제2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난구조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340호, 2013. 1. 2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수난구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4457호, 2013. 3. 23.>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난구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 제24조제4항 및 제34조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를 “안전행정부”로,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25753호, 2014. 11. 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까지 생략

2(수난구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이 되고”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라 한다)이 되고”로, “해양경찰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를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의 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해양경찰서의 서장” 및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5조제7항, 제24조제4항 및 제34조제2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8조제11호 및 제11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중 “광역구조본부의 장(인천해양경찰서에 두는 지역대책위원회의 경우에는 중앙구조본부의 장을 말한다)”을 “광역구조본부의 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및 제28조제3호 중 “해양경찰관”을 각각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24조제2항·제3항, 제27조제1항·제2항 및 제28조제4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9조 제목 “(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수난)”을 “(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이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수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이하 “중앙소방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중앙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전단 중 “해양경찰서(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를 “해양경비안전서(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4조제2항 후단 및 제40조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3) 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25985호, 2015. 1. 6.>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수난구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를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로 한다.

2& 부터3)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6930호,2016. 1.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8항제2호 중 “ 「수난구조법」 ”을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②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 「수난구조법」 ”을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③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 중 “ 「수난구조법」 ”을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④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 「수난구조법」 제2조제4호에 ”를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로 한다.

제8조제1호나목 중 “ 「수난구조법 시행령」 ”을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으로 한다.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 「수난구조법」 ”을 각각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난구조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수난구조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371호,2016. 7. 22.>

이 영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8조 및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17호,2017. 7. 26.>(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라 한다)”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를 “해양경찰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0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30조의2제1항, 제30조의9제2항, 제34조제2항 후단 및 제40조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로 한다.

제5조제7항, 제24조제4항, 제30조의2제1항, 제30조의3제3항, 제30조의6, 제30조의7 및 제34조제2항 전단 중 “총리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3, 제17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24조제2항·제3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4호, 제30조의2제6항, 제30조의3제2항·제3항, 제30조의4, 제30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30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8조제12호 및 제11조제1항 중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122구조대”를 “해양경찰구조대”로, “해양경비안전서”를 “해양경찰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22특수구조단”을 “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로,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및 제28조제3호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각각 “해양경찰관”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을 “소방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이하 "중앙소방본부장"이라 한다)”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중앙소방본부장”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전단 중 “해양경비안전서(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를 “해양경찰서(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제28870호,2018. 5. 8.>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9966호,2019. 7.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5제2항제3호의2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07호,2019. 11. 12.>

이 영은 2019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80호,2021. 1. 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026호,2021. 10.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1호 중 “제7조”를 “제6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33112호,2022. 12. 20.>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19호,2023. 9.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45호,2024. 12. 3.>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가목, 제7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제16조제1항제2호 중 “민간해양구조대원”을 각각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 한다.

부칙 <제35597호,2025. 6. 20.> (간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의료법」 제80조제1항”을 “「간호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1^ 부터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5811호,2025. 10. 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17호,2025. 12.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상구조사 지도사 자격기준에 관한 특례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여 법률 제20600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적용받는 사람에게 별표 1의2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수상구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를 “종전의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로 보아 업무 경력을 산정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0조의4에 따른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은 별표 1의2 제1호나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상구조사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6625호, 2026. 8.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5. 12. 16.>

자격시험의 과목 및 배점(제30조의4제2항 관련)

1. 수상구조사 지도사

| 구분 | 과목 및 배점 | |
|----------------|---|---|
| 면접시험
(100점) | 가. 조난사고의 이해(10점)
나. 관련 법령(10점)
다. 응급처치(25점)
라. 구조기술(25점) | 마. 수상구조 지도 능력(15점)
바. 사고 관리 및 위기대응 능력
(15점) |

2. 수상구조사 1급

| 구분 | 과목 및 배점 | |
|----------------|---|--|
| 필기시험
(100점) | 가. 수상구조사의 자세(5점)
나. 조난사고의 이해(15점)
다. 관련 법령(10점)
라. 응급처치(20점) | 마. 구조기술(25점)
바. 수상구조 지도 능력(10점)
사. 생존수영(15점) |
| 실기시험
(100점) | 가. 영법(15점)
나. 수영구조(15점)
다. 장비구조(15점)
라. 기본구조(20점) | 마. 종합구조(25점)
바. 응급처치(10점) |

3. 수상구조사 2급

| 구분 | 과목 및 배점 | |
|----------------|---|--|
| 필기시험
(100점) | 가. 수상구조사의 자세(5점)
나. 조난사고의 이해(15점)
다. 관련 법령(10점)
라. 응급처치(20점) | 마. 구조기술(25점)
바. 수상구조 지도 능력(10점)
사. 생존수영(15점) |
| 실기시험
(100점) | 가. 영법(15점)
나. 수영구조(15점)
다. 장비구조(15점)
라. 기본구조(20점) | 마. 종합구조(20점)
바. 응급처치(15점) |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신설 2025. 12. 16.>

수상구조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및 업무수행 범위(제30조의7 관련)

1. 자격기준

| 등급 | 자격기준 |
|-----------------|---|
| 가. 수상구조사
지도사 | 수상구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수상구조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갖춘 뒤에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수상구조사 지도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
| 나. 수상구조사
1급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교육기관에서 수상구조사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수상구조사 1급 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수상구조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수상구조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갖춘 뒤에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수상구조사 1급 시험에 합격한 사람 |
| 다. 수상구조사
2급 | 교육기관에서 수상구조사 2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수상구조사 2급 시험에 합격한 사람 |

2. 업무수행 범위

| 등급 | 업무수행 범위 |
|-----------------|---|
| 가. 수상구조사
지도사 | 1) 수상에서의 인명구조에 관한 수상구조사의 활동 지침 수립
2) 수상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활동·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
3) 수상구조사 지도사·1급·2급 인력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훈련·평가
4) 수상구조사 1급·2급의 업무 |
| 나. 수상구조사
1급 | 1) 수상에서의 인명구조에 관한 수상구조사의 활동 지침 수립 지원
2) 수상구조사 2급 인력에 대한 관리·감독
3) 수상구조사 2급의 업무 |
| 다. 수상구조사
2급 | 1) 수상에서의 인명구조
2) 수상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교육
3) 수상안전 시설 및 장비의 운용·점검 |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25. 12. 16.>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제30조의9제2항 관련)

| 통보기관의 장 | 개인정보의 내용 |
|---|---|
|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되거나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 중인 사람에 대한 자료 |
| 2. 병무청장 | 「병역법」 제14조에 따라 정신질환으로 병역이 면제된 사람에 대한 자료 |
| 3.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육군의 각 군사령관 및 국군의무사령관 | 군 재직 중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역 조치된 사람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신질환으로 전역 조치된 사람에 대한 자료 |
| 4.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가.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치료 중인 정신질환자로서 입원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에 대한 자료
나.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하여 입원·치료 중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자료 |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 7.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 관련)**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채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를 신고 또는 비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 제1항제1호 | 40만원 | 80만원 | 120만원 |
| 나.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여객선비상수색구조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 제1항제2호 | 1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 | | | | |
|---|---------------|-------|-------|-------|
| 다. 법 제10조에 따른 이동 및 대피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 제1항제3호 | 1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 라. 법 제1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조난된 선박등의 선장·기장 또는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난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46조 제1항제4호 | 40만원 | 80만원 | 120만원 |
| 마. 법 제15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조난된 선박등으로부터 조난신호나 조난통신을 수신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46조 제1항제4호 | 40만원 | 70만원 | 100만원 |
| 바.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등의 소재가 불명하고 통신이 두절되어 실종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선박의 소유자·운항자 또는 관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46조 제1항제4호 | 40만원 | 80만원 | 120만원 |
| 사.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구조요청을 받았을 때 지원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 제1항제5호 | 1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 아. 법 제30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 제1항제6호 | 1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 자.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0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의 가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의 정보를 알린 경우 | 법 제46조 제1항제7호 | 60만원 | 120만원 | 200만원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12. 21.] [해양수산부령 제773호, 2025. 12. 19.,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032 - 835 - 224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22.>

제2조(수난대비기본계획 및 수난대비집행계획의 수립·변경) ①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난대비기본계획 및 수난대비집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 22.>

1. 장기적인 수난구호대책의 수립
2. 수난구호협력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의 구축
3. 수난구호협력기관 간의 각종 장비 및 인력 등의 지원과 상호응원
4. 수난구호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교환
5. 수난구호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시행
6. 수난구호장비 및 시설의 확충·관리
7. 수난구호에 필요한 응급자재 및 장비의 비축·수급
8. 그 밖에 효율적인 수난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난대비기본계획 및 수난대비집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3조(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의 명칭·위치 및 수난구호 관할해역) ①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제7항에 따른 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의 명칭·위치 및 수난구호 관할해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 1. 22.>

② 제1항에 따른 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의 수난구호 관할해역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2에 따른 항공수색 및 구조구역을 포함한다.

제4조(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종합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신속한 수난구호 관련 정보의 수집·전파와 수난구호 자원의 관리·지원을 위한 방송 및 정보통신체계
2. 수난구호상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각종 장비 운영·관리체계
3. 그 밖에 조난사고 대비와 수난구호업무를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하 “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은 종합상황실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여객선비상수색구조 훈련은 충돌, 좌초, 침수, 화재, 전복 및 탑승객 해상추락 등의 상황을 대비한 훈련으로 한다.

제6조(선박의 이동 및 대피 명령) 구조본부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이동 및 대피 명령을 할 때에는 대상 선박의 선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이동 및 대피 사유
2. 이동 및 대피 해역
3. 이동 및 대피 기간

제7조(조난선박의 긴급피난 허가 절차)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긴급피난 허가를 받으려는 조난선박의 선장 또는 소유자는 구조본부의 장에게 유선·무선 통신 또는 서면으로 긴급피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구조본부의 장이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선명(船名) 및 호출부호
2. 선적항
3. 선장의 성명 및 선원 수
4. 현재 위치(위도·경도)
5. 총톤수 및 전장(全長)
6. 최대 흘수
7. 항해장치·기기 작동상태
8. 위험물 적재 여부
9. 피난 이유
10. 도착 예정시각
11. 통신연락방법

② 제1항에 따라 긴급피난 허가 신청을 받은 구조본부의 장은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선·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긴급피난을 허가한다.

1. 선체 및 기관의 중대한 손상 등의 사고로 인하여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2. 태풍 등 악천후(惡天候)로 인하여 선박운항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3. 연료, 청수(淸水) 또는 식료품 등이 불의의 사태로 결핍되어 선박의 안전 또는 승무원의 생명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4. 해적 및 폭동 등의 위험으로부터 피난할 경우
5. 선박 내에 있는 사람이 중상을 입거나 위급한 병에 걸려 신속히 전문의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6. 그 밖에 긴급피난을 하지 않을 경우 선박 및 선원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제8조(구난작업 신고서의 제출)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구난작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난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구난작업 신고서를 관할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1. 10. 8.>

제9조(대규모 조난사고 합동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 등) ①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대규모 조난사고 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조사단은 현지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조사단의 조사 시기 및 기간 등은 조난의 유형,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앙구조본부의 장이 정한다.

제10조(수난구조업무 종사명령서 등) ①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난구조를 위한 종사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난구조업무 종사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선박, 자동차, 항공기, 다른 사람의 토지, 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 등을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물자 등 사용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시설·물자 등 사용통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구술로 통지하며, 사용이 끝난 후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물자 등 사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11조(보상금 지급 또는 치료 신청) 법 제29조제3항(법 제30조제7항 및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나 영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치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조난지역 또는 해당 수난구조업무(해양재난구조대원의 경우에는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말한다)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 22., 2016. 10. 19., 2017. 7. 26., 2019. 7. 10., 2025. 1. 3.>

1. 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 및 유족(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부상(질병)의 경우: 병원진료확인서
3. 장애의 경우: 장애판정서

[제목개정 2016. 10. 19.]

제12조(수난구조참여자의 처우 등) ① 법 제30조제2항에서 “수난구조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구조본부의 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수난구조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로 조난사고를 야기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9. 7. 10., 2021. 10. 8.>

② 구조본부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대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된 제1항에 따른 수난구조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 3.>

③ 제2항에 따른 출동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7. 10., 2025. 1. 3.>

④ 제2항에 따른 수당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출동수당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조본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7. 10., 2023. 2. 23., 2025. 1. 3.>

1. 유류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제원과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류

2. 선박에 승선하거나 항공기에 탑승한 사람이 있는 경우: 선박의 승선원 또는 항공기의 탑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⑤ 삭제 <2025. 1. 3.>

⑥ 삭제 <2025. 1. 3.>

⑦ 삭제 <2025. 1. 3.>

⑧ 삭제 <2025. 1. 3.>

[제목개정 2025. 1. 3.]

제12조의2(응시원서의 제출)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영 제30조의3제4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관리기관의 장(해양경찰청장을 말하되, 영 제30조의8에 따라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9. 7. 10., 2025. 12. 19.>

1. 제12조의7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

2. 경력증명서(수상구조 분야 업무 경력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응시자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 2매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기록하며, 응시원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응시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 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기록 및 관리하는 경우에는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5. 12. 19.>

[본조신설 2016. 8. 31.]

제12조의3(실기시험의 채점기준) ① 영 제3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실기시험의 채점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 12. 19.>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자격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시험성적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5. 12. 1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기시험의 채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8. 31.]

제12조의4(자격증의 발급 등)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합격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5. 12. 1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증 재발급(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5. 12. 19.>

1.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그 자격증 및 신청인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 1매
2.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1부 및 신청인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 1매

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갱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증 재발급(갱신) 신청서에 제12조의11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수료증을 첨부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1. 10. 8.>

⑤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재발급 또는 갱신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전자적 형태의 기록 및 관리를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5. 12. 19.>

1. 자격증을 발급하려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
2. 자격증을 재발급 또는 갱신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

⑥ 삭제 <2021. 10. 8.>

[본조신설 2016. 8. 31.]

제12조의5(교육기관의 지정)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 중 별표 4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을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

”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수상구조사 1급·2급 교육과정을 모두 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과 수상구조사 2급 교육과정만 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3. 12. 1., 2025. 12. 19.>

1. 해양경찰, 소방 등 수상구조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2. 학교 및 연구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허가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수상구조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 ②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단체 또는 기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3. 12. 1.>
1. 교육기관 운영계획서 1부
 2.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시설의 사용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3. 12. 1.>
- ④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교육기관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3. 12. 1.>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7. 7. 26.>
- [본조신설 2016. 8. 31.]

제12조의6(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3. 12.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2조의7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제12조의7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취소(업무정지) 통지서로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3. 12. 1.>
- ④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교육기관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기 전에 지정기준을 갖추도록 개선·보완할 것을

1회에 한정하여 명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2023. 12. 1.>

⑤ 제4항에 따른 개선·보완 명령에는 해당 교육기관이 개선·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기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교육기관은 제3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교육기관 지정서를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3. 12. 1.>

[본조신설 2016. 8. 31.]

제12조의7(수상구조사 교육과정 등) ① 교육기관이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 과정은 별표 6에 따른다.

②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8. 31.]

제12조의8(교육기관의 관리·감독)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 발급·관리업무 등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점검일부터 3일 전까지 점검일시 등을 해당 교육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8. 31.]

제12조의9(자격시험 수수료) ①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영 제30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25. 12. 19.>

1. 필기시험 응시 수수료: 1만원

2. 실기시험 응시 수수료: 3만원

3. 면접시험 응시 수수료: 5만원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를 그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환불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1. 10. 8., 2024. 9. 26., 2025. 12. 19.>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자격시험에 응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시행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입원 또는 격리(시험시행일이 치료·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6.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시행일 7일 전부터 시험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가. 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 나.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 다.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라.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마.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7. 그 밖에 영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16. 8. 31.]

제12조의10(수상구조사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방법) 영 제30조의9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개인정보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수상구조사 결격사유 통보대장에 따른다. 이 경우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는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7. 10.]

[종전 제12조의10은 제12조의11로 이동 <2019. 7. 10.>]

제12조의11(수상구조사 보수교육) ① 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③ 법 제30조의7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미리 받거나 연기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사전이수(연기)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4항 각 호의 서류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0. 11. 12., 2025. 12. 19.>

1. 보수교육을 미리 받으려는 경우: 법 제30조의7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보수교육 기간”이라 한다) 시작일 3일 전까지

2. 보수교육을 연기하려는 경우: 보수교육 기간 만료일까지

④ 해양경찰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0. 11. 12.>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해외에 체류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병적증명서(군복무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해양경찰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 기간 이전에 미리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연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의 연기는 1회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로 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2020. 11. 1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 등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 11. 12.>

[본조신설 2016. 8. 31.]

[제12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11은 제12조의12로 이동 <2019. 7. 10.>]

제12조의12(자격의 취소·정지 처분) ① 법 제30조의8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 취소·정지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8. 31.]

[제12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12는 제12조의13으로 이동 <2019. 7. 10.>]

제12조의13(신체검사의 대상) 법 제30조의12제2항에 따라 신체검사 대상이 되는 잠수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 한다. <개정 2019. 7. 10., 2025. 1. 3.>

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잠수기능사 또는 잠수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였을 것
2. 수중에서 구조작업 등 업무경험이 있을 것
3. 구조본부의 장이 심해(深海)에서의 잠수 및 수난구조 업무를 위하여 신체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본조신설 2016. 8. 31.]

[제12조의12에서 이동 <2019. 7. 10.>]

제13조(선박위치통보 선박의 범위)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선박의 위치를 통보하여야 하는 선박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해수면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및 관련 의정서에 따른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선박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4. 2. 5.>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
2.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중 항행시간이 12시간 이상인 선박
3.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종불능선(操縱不能船)、조종제한선(操縱制限船) 및 흘수제약선(吃水制約船)
4. 예인선열(曳引船列)의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예인선
5. 석유류 액체화학물질 등 위험화물을 운송하고 있는 선박

제14조(선박위치통보의 시기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선박위치통보(이하 “선박위치통보”라 한다)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항해계획통보: 선박이 항구 또는 포구를 출항하기 직전 또는 그 직후나 해양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선박위치통보해역에 진입한 때

2. 위치통보: 항해계획 통보 후 약 12시간마다
 3. 변경통보: 항해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 선박이 예정위치에서 25해리 이상 벗어난 때 또는 목적지를 변경한 때
 4. 최종통보: 목적지에 도착하기 직전이나 도착한 때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선박위치통보해역을 벗어난 때
- ② 선박위치통보는 서면 제출 또는 유선·무선통신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③ 선박위치통보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항해계획통보: 별지 제7호서식
 2. 위치통보: 별지 제8호서식
 3. 변경통보: 별지 제9호서식
 4. 최종통보: 별지 제10호서식
- ④ 무선통신으로 선박위치통보를 할 때에는 「전파법」에 따라 선박에 개설된 무선국에 지정된 주파수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주파수를 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15조(관련 자료의 수집)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수난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선박위치통보자료 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1. 10. 8.>

1. 선박과 통신장비의 제원(諸元) 및 통신청취 당직근무 시간 등에 관한 사항
2. 선박위치 예측을 위한 선박의 운항속력, 선박의 종류, 승무원원 및 선박의 유형·크기·색채 등
3. 선박에 비치된 안전 및 구명 설비
4. 그 밖에 수난구호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16조(관련 자료의 보호 및 제공) ①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제14조에 따른 선박위치통보자료 및 제15조에 따른 자료를 조난사고의 방지와 수난구호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해양경찰청장은 수난구호업무를 위하여 외국의 수난구호업무 관련 기관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17조(표류물 및 침몰품의 인도 기관) 영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신고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2014. 11. 19., 2017. 7. 26., 2021. 10. 8., 2025. 1. 3.>

제18조(구호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기준) 법 제38조제3항 후단(법 제3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구호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0. 8.>

1. 구조된 사람 또는 유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에서 구조된 사람 또는 유족의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구호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수난구호비용의 지급신청)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난구호비용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난지역 또는 해당 수난구호업무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

제20조(규제의 재검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2조의5 및 별표 4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2. 제12조의6 및 별표 5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기준
- [본조신설 2022. 2. 24.]

부칙 <제512호, 2012. 8. 23.>

이 규칙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호, 2013. 3. 24.>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난구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표 1 남해광역구조본부의 소속 지역구조본부란 중 통영란 다음에 창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 창원 |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해양경찰서) |
|----|-----------------------|

② 생략

부칙 <제1105호, 2014. 11. 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3# 까지 생략

3\$ 수난구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1항제3호, 제14조제1항제1호·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관할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의 장"이라 한다)”을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관할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해양경비안전서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하 "국민안전처장관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등”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제3호, 같은 쪽 연월일란 다음,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1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의 명칭·위치 및 수난구조 관할해역(제3조제1항 관련)

| 명칭 | 위치 | 관할 해역 | 소속 지역구조본부 | |
|------------------|---------------------------------|--|-----------|-------------------------|
| | | | 명칭 | 위치 |
| 동해광
역구조
본부 | 강원도 동해시
(동해해양경비
안전본부) | 북위 40도 00분 동경 127도 58분
북위 40도 00분 동경 135도 00분
북위 37도 20분 동경 135도 00분
북위 35도 39분 동경 131도 18분
북위 35도 39분 동경 129도 27분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중 외
국의 영해를 제외한 해역 | 속초 | 강원도 속초시
(속초해양경비안전서) |
| | | | 동해 | 강원도 동해시
(동해해양경비안전서) |
| | | | 포항 |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해양경비안전서) |
| 남해광
역구조
본부 | 부산광역시
(남해해양경비
안전본부) | 북위 35도 39분 동경 129도 27분
북위 35도 39분 동경 131도 18분
북위 35도 00분 동경 130도 00분
북위 34도 40분 동경 129도 10분
북위 33도 12분 동경 128도 05분
북위 33도 15분 동경 128도 00분
북위 34도 42분 36초 동경 128도 00분
북위 34도 56분 20초 동경 127도 52분 26
초
북위 34도 56분 38초 동경 127도 52분 25
초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중 외
국의 영해를 제외한 해역 | 울산 | 울산광역시
(울산해양경비안전서) |
| | | | 부산 | 부산광역시
(부산해양경비안전서) |
| | | | 창원 |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해양경비안전서) |
| | | | 통영 |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양경비안전서) |
| 서해광
역구조
본부 | 전라남도
목포시
(서해해양경비
안전본부) | 북위 34도 56분 38초 동경 127도 52분 25
초
북위 34도 56분 20초 동경 127도 52분 26
초
북위 34도 42분 36초 동경 128도 00분
북위 33도 15분 동경 128도 00분
북위 33도 56분 동경 127도 13분 30초
북위 33도 56분 동경 126도 30분
북위 34도 03분 동경 126도 30분
북위 34도 03분 동경 126도 15분
북위 34도 00분 동경 126도 15분
북위 32도 14분 동경 121도 00분
북위 36도 10분 54초 동경 121도 00분
북위 36도 10분 54초 동경 125도 36분
북위 36도 09분 동경 125도 36분
북위 36도 09분 동경 126도 01분
북위 36도 06분 동경 126도 01분
북위 36도 06분 동경 126도 27분
북위 36도 02분 21초 동경 126도 35분 | 여수 |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해양경비안전서) |
| | | | 완도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해양경비안전서) |
| | | | 목포 |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해양경비안전서) |
| | | | 군산 |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해양경비안전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북위 35도 59분 26초 동경 126도 35분
북위 35도 59분 26초 동경 126도 39분 27초
북위 36도 00분 03초 동경 126도 40분 03초
북위 36도 00분 03초 동경 126도 43분 24초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중 외국의 영해를 제외한 해역 | | |
| 중부광역구조본부 | 인천광역시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 북위 40도 00분 동경 121도 50분
북위 40도 00분 동경 121도 00분
북위 36도 10분 54초 동경 121도 00분
북위 36도 10분 54초 동경 125도 36분
북위 36도 09분 동경 125도 36분
북위 36도 09분 동경 126도 01분
북위 36도 06분 동경 126도 01분
북위 36도 06분 동경 126도 27분
북위 36도 02분 21초 동경 126도 35분
북위 35도 59분 26초 동경 126도 35분
북위 35도 59분 26초 동경 126도 39분 27초
북위 36도 00분 03초 동경 126도 40분 03초
북위 36도 00분 03초 동경 126도 43분 24초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중 외국의 영해를 제외한 해역 | 보령 |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해양경비안전서) |
| | | | 태안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해양경비안전서) |
| | | | 평택 | 경기도 평택시
(평택해양경비안전서) |
| | | | 인천 | 인천광역시
(인천해양경비안전서) |
| 제주광역구조본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 북위 32도 14분 동경 121도 00분
북위 30도 00분 동경 121도 00분
북위 30도 00분 동경 125도 25분
북위 32도 30분 동경 127도 30분
북위 33도 12분 동경 128도 05분
북위 33도 15분 동경 128도 00분
북위 33도 56분 동경 127도 13분 30초
북위 33도 56분 동경 126도 30분
북위 34도 03분 동경 126도 30분
북위 34도 03분 동경 126도 15분
북위 34도 00분 동경 126도 15분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중 외국의 영해를 제외한 해역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해양경비안전서) |
| | | | 서귀포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

비고: 지역구조본부의 관할해역은 해당 지역구조본부가 설치된 해양경비안전서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제1호·제2호 중 “해양경찰기관”을 각각 “해양경비안전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해양경찰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해양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서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을 각각 “소방본부장/소방서장”으로 한다.

3% 부터4! 까지 생략

부칙 <제1244호,2016. 1. 22.>

이 규칙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8호,2016. 8.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9호,2016. 10.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호,2017. 7. 26.>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1항제3호, 제1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2조의3제2항·제3항, 제1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제6항, 제12조의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1호·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1항·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조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관할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해양경비안전서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하 "국민안전처장관등"이라 한다)”을 “관할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국민안전처장관등”을 각각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10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2조의8제1항·제2항, 제12조의11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1항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총리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의 명칭·위치 및 수난구조 관할해역(제3조제1항 관련)

| 명칭 | 위치 | 관할 해역 | 소속 지역구조본부 | |
|----------|-------------------------|---|-----------|-----------------------|
| | | | 명칭 | 위치 |
| 동해광역구조본부 | 강원도 동해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 북위 40도 00분 동경 127도 58분
북위 40도 00분 동경 135도 00분
북위 37도 20분 동경 135도 00분
북위 35도 39분 동경 131도 18분
북위 35도 39분 동경 129도 27분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중 외국의 영해를 제외한 해역 | 속초 | 강원도 속초시
(속초해양경찰서) |
| | | | 동해 | 강원도 동해시
(동해해양경찰서) |
| | | | 포항 |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해양경찰서) |
| | | | 울산 | 울산광역시
(울산해양경찰서) |
| 남해광역구조본부 | 부산광역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 북위 35도 39분 동경 129도 27분
북위 35도 39분 동경 131도 18분
북위 35도 00분 동경 130도 00분
북위 34도 40분 동경 129도 10분
북위 33도 12분 동경 128도 05분
북위 33도 15분 동경 128도 00분
북위 34도 42분 36초 동경 128도 00분
북위 34도 56분 20초 동경 127도 52분 26초
북위 34도 56분 38초 동경 127도 52분 25초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중 외국의 영해를 제외한 해역 | 부산 | 부산광역시
(부산해양경찰서) |
| | | | 창원 |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해양경찰서) |
| | | | 통영 |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양경찰서) |
| | | | 여수 |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해양경찰서) |
| 서해광역구조본부 | 전라남도 목포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 북위 34도 56분 38초 동경 127도 52분 25초
북위 34도 56분 20초 동경 127도 52분 26초
북위 34도 42분 36초 동경 128도 00분
북위 33도 15분 동경 128도 00분
북위 33도 56분 동경 127도 13분 30초
북위 33도 56분 동경 126도 30분 | 완도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해양경찰서) |

| | | | | |
|------------------|--------------------------|--------------------------------|----|-----------------------|
| 중부광
역구조
본부 | 인천광역시
(중부지방해
양경찰청) | 북위 34도 03분 동경 126도 30분 | 목포 |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해양경찰서) |
| | | 북위 34도 03분 동경 126도 15분 | | |
| | | 북위 34도 00분 동경 126도 15분 | | |
| | | 북위 32도 14분 동경 121도 00분 | | |
| | | 북위 36도 10분 54초 동경 121도 00분 | | |
| | | 북위 36도 10분 54초 동경 125도 36분 | | |
| | | 북위 36도 09분 동경 125도 36분 | 부안 |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해양경찰서) |
| | | 북위 36도 09분 동경 126도 01분 | | |
| | | 북위 36도 06분 동경 126도 01분 | | |
| | | 북위 36도 06분 동경 126도 27분 | | |
| | | 북위 36도 02분 21초 동경 126도 35분 | | |
| | | 북위 35도 59분 26초 동경 126도 35분 | | |
| | | 북위 35도 59분 26초 동경 126도 39분 27초 | 군산 |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해양경찰서) |
| | | 북위 36도 00분 03초 동경 126도 40분 03초 | | |
| | | 북위 36도 00분 03초 동경 126도 43분 24초 | | |
| | |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중 외 | | |
| | | 국의 영해를 제외한 해역 | | |
| | | 북위 40도 00분 동경 121도 50분 | 보령 |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해양경찰서) |
| | | 북위 40도 00분 동경 121도 00분 | | |
| | | 북위 36도 10분 54초 동경 121도 00분 | | |
| | | 북위 36도 10분 54초 동경 125도 36분 | | |
| | | 북위 36도 09분 동경 125도 36분 | | |
| | | 북위 36도 09분 동경 126도 01분 | | |
| | | 북위 36도 06분 동경 126도 01분 | 태안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해양경찰서) |
| | | 북위 36도 06분 동경 126도 27분 | | |
| | | 북위 36도 02분 21초 동경 126도 35분 | | |
| | | 북위 35도 59분 26초 동경 126도 35분 | | |
| | | 북위 35도 59분 26초 동경 126도 39분 27초 | | |
| | | 북위 36도 00분 03초 동경 126도 40분 03초 | | |
| | | 북위 36도 00분 03초 동경 126도 43분 24초 | 평택 | 경기도 평택시
(평택해양경찰서) |
| | |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중 외 | | |
| | |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중 외 | 인천 | 인천광역시
(인천해양경찰서) |
| | |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중 외 | | |

별표 4 제3호가목의 자격기준란, 같은 호 다목의 자격기준란,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까지,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응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란 제4호,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제1호, 같은 서식 (뒤쪽) 준수사항란 제2호 중 “해양경비안전기관”을 각각 “해양경찰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준수사항란 제4호,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1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7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해양경비안전서”를 각각 “해양경찰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6호서식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중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을 각각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중 “00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00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22호서식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26호 서식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를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 <제359호, 2019. 7.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및 별표 4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교육·훈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43호, 2020. 11.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8호, 2021. 10.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수상구조사 자격증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수상구조사 자격증으로 본다.

부칙 <제536호, 2022. 2. 24.>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4호,2023. 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동수당 등의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4항에 따라 출동수당 등 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출동수당 등의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13호,2023. 7. 6.>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3호가목1)(가)·(나) 외의 부분 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635호,2023. 1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2호,2024. 2. 5.>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해사안전법」 제2조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693호,2024. 9.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2호, 2025. 1.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동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양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대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난구조참여자(이하 "참여자"라 함)가 출동하거나 동원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13호, 2025. 1. 3.>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 <제773호, 2025. 12.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교육기관은 제12조의5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상구조사 1급·2급 교육과정을 모두 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교육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교육기관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④ 법률 제20600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단체는 제12조의5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상구조사 2급 교육과정만 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교육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교육기관이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해당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고시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5. 12. 19.>

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의 명칭·위치 및 수난구조 관할해역 (제3조제1항 관련)

| 명칭 | 위치 | 관할 해역 | 소속 지역구조본부 | |
|------------------|--------------------------------|--|-----------|-----------------------|
| | | | 명칭 | 위치 |
| 동해광
역구조
본부 | 강원도 동해시
(동해지방해양
경찰청) | 북위 40도 00분 동경 127도 58분
북위 40도 00분 동경 135도 00분
북위 37도 20분 동경 135도 00분
북위 35도 39분 동경 131도 18분
북위 35도 39분 동경 129도 27분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중 외
국의 영해를 제외한 해역 | 속초 | 강원도 속초시
(속초해양경찰서) |
| | | | 강릉 | 강원도 강릉시
(강릉해양경찰서) |
| | | | 동해 | 강원도 동해시
(동해해양경찰서) |
| | | | 울진 |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해양경찰서) |
| | | | 포항 |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해양경찰서) |
| 남해광
역구조
본부 | 부산광역시
(남해지방해양
경찰청) | 북위 35도 39분 동경 129도 27분
북위 35도 39분 동경 131도 18분
북위 35도 00분 동경 130도 00분
북위 34도 40분 동경 129도 10분
북위 33도 12분 동경 128도 05분
북위 33도 15분 동경 128도 00분
북위 34도 42분 36초 동경 128도 00분
북위 34도 56분 20초 동경 127도 52분 26초
북위 34도 56분 38초 동경 127도 52분 25초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중 외
국의 영해를 제외한 해역 | 울산 | 울산광역시
(울산해양경찰서) |
| | | | 부산 | 부산광역시
(부산해양경찰서) |
| | | | 창원 |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해양경찰서) |
| | | | 통영 |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양경찰서) |
| | | | 사천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해양경찰서) |
| 서해광
역구조
본부 | 전라남도
목포시
(서해지방해양
경찰청) | 북위 34도 56분 38초 동경 127도 52분 25초
북위 34도 56분 20초 동경 127도 52분 26초
북위 34도 42분 36초 동경 128도 00분
북위 33도 15분 동경 128도 00분
북위 33도 56분 동경 127도 13분 30초
북위 33도 56분 동경 126도 30분
북위 34도 03분 동경 126도 30분
북위 34도 03분 동경 126도 15분
북위 34도 00분 동경 126도 15분
북위 32도 14분 동경 121도 00분
북위 36도 10분 54초 동경 121도 00분 | 여수 |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해양경찰서) |
| | | | 완도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해양경찰서) |
| | | | 목포 |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해양경찰서) |

| | | | | |
|----------|-------------------------------|---|-----|-------------------------------|
| | | 북위 36도 10분 54초 동경 125도 36분
북위 36도 09분 동경 125도 36분
북위 36도 09분 동경 126도 01분
북위 36도 06분 동경 126도 01분
북위 36도 06분 동경 126도 27분
북위 36도 02분 21초 동경 126도 35분
북위 35도 59분 26초 동경 126도 35분
북위 35도 59분 26초 동경 126도 39분 27초
북위 36도 00분 03초 동경 126도 40분 03초
북위 36도 00분 03초 동경 126도 43분 24초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중 외국의 영해를 제외한 해역 | 부안 |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해양경찰서) |
| | | | 군산 |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해양경찰서) |
| 중부광역구조본부 | 인천광역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 북위 40도 00분 동경 121도 50분
북위 40도 00분 동경 121도 00분
북위 36도 10분 54초 동경 121도 00분
북위 36도 10분 54초 동경 125도 36분
북위 36도 09분 동경 125도 36분
북위 36도 09분 동경 126도 01분
북위 36도 06분 동경 126도 01분
북위 36도 06분 동경 126도 27분
북위 36도 02분 21초 동경 126도 35분
북위 35도 59분 26초 동경 126도 35분
북위 35도 59분 26초 동경 126도 39분 27초
북위 36도 00분 03초 동경 126도 40분 03초
북위 36도 00분 03초 동경 126도 43분 24초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중 외국의 영해를 제외한 해역 | 보령 |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해양경찰서) |
| | | | 태안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해양경찰서) |
| | | | 평택 | 경기도 평택시
(평택해양경찰서) |
| | | | 인천 | 인천광역시
(인천해양경찰서) |
| | | | | |
| 제주광역구조본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지방해양경찰청) | 북위 32도 14분 동경 121도 00분
북위 30도 00분 동경 121도 00분
북위 30도 00분 동경 125도 25분
북위 32도 30분 동경 127도 30분
북위 33도 12분 동경 128도 05분
북위 33도 15분 동경 128도 00분
북위 33도 56분 동경 127도 13분 30초
북위 33도 56분 동경 126도 30분
북위 34도 03분 동경 126도 30분
북위 34도 03분 동경 126도 15분
북위 34도 00분 동경 126도 15분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중 외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해양경찰서) |
| | | | 서귀포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해양경찰서) |

| | | | |
|--|---------------|--|--|
| | 국의 영해를 제외한 해역 | | |
|--|---------------|--|--|

비고: 지역구조본부의 관할해역은 해당 지역구조본부가 설치된 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1. 3.>

수난구조참여자의 출동수당의 지급기준(제12조제3항 관련)

1. 활동비: 1명당 1일 1회로 한정하여 활동시간(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시간부터 임무 종료 후 복귀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및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과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선원의 임금 최저액(월 단위로 정한 경우에는 240시간으로 나눈 금액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 금액을 말한다) 중 높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 활동시간이 8시간 이하인 경우: 기본수당

기본수당 = 시간급 최저임금액 × 8시간. 이 경우 10원 미만은 버린다.

나. 활동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기본수당 + 초과수당

초과수당 = 시간급 최저임금액 × 초과 활동시간. 이 경우 10원 미만은 버린다.

2. 유류비: 동원 선박 및 항공기의 유류사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정부 지원 등 다른 방법에 따라 유류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유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가. 선박: 유류소모량(리터) × 해당 월 유가. 이 경우 10원 미만은 버린다.

- 1) 유류소모량: 인정유류소모량과 동원 선박이 제출한 유류소모량을 비교하여 적은 양으로 하며, 인정유류소모량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 유류 종류 | 산출기준 |
|-------------|---------------------|
| 경유 | 활동시간 × 마력 × 0.118리터 |
| 휘발유 | 활동시간 × 마력 × 0.209리터 |
| BA·BB유 등 중유 | 활동시간 × 마력 × 0.106리터 |

2) 유가

가) 어선: 매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에서 공급하는 면세유가를 기준으로 한다.

나) 어선 외의 선박: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한국석유공사”라 한다)에서 공시하는 선박용 경유 및 보통휘발유의 정유사 공급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BA·BB유 등 중유를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는 한국석유공사에서 공시하는 선박용 경유의 정유사 공급가를 기준으로 한다.

나. 항공기: 유류소모량(리터) × 해당 월 유가. 이 경우 10원 미만은 버린다.

1) 유류소모량: 항공기 제작사에서 인정하는 유류소모량

2) 유가: 한국석유공사에서 공시하는 고급휘발유의 정유사 공급가 또는 실거래가 중 낮은 금액

3. 여비: 운임(교통비), 식비 및 숙박비를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다.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5. 12. 19.>

실기시험 채점 기준(제12조의3제1항 관련)

1. 수상구조사 1급

| 과목 | 세부항목 | 채점기준 | 점수 | 비 고 |
|----------|------------------------------|---|----|--|
| 영법 | 잠영(25m) | 영법 순서대로 연속하여 실시하되, 제한 시간 이내에 완주하는지 여부 | 15 | 총 100m 기준
1분 30초 이내: 15점
1분 35초 이내: 12점
1분 40초 이내: 9점
1분 45초 이내: 6점
1분 45초 초과: 0점 |
| | 머리 들고 자유형(25m) | | | |
| | 평영(25m) | | | |
| | 트러젠(Trudgen Stroke, 25m) | | | |
| 수영
구조 | 입수법 | 주어진 상황에서 각 항목 별로 정확하게 구조방법을 수행하는지 여부 | 15 | |
| | 접근법 | | | |
| | 구조법 | | | |
| | 운반법 | | | |
| | 풀기(앞·뒷목, 손목) | | | |
| 장비
구조 | 입수법 | 주어진 상황에서 각 항목 별로 정확하게 구조방법을 수행하는지 여부 | 15 | |
| | 접근법 | | | |
| | 구조법 | | | |
| | 운반법 | | | |
| 기본
구조 | 입영 | 수면 위로 손목을 내놓은 상태로 다리만을 이용하여 물에 뜨는지 여부 | 20 | 물에 떠있는 시간 기준
5분 이상: 15점
4분50초 이상: 12점
4분40초 이상: 9점
4분30초 이상: 6점
4분30초 미만: 0점 |
| | 스컬링
(Sculling) | 손을 주로 사용하여 물에 뜨거나 수중에서 지정한 위치를 유지하는지 여부 | | |
| 종합
구조 | 머리지지/
머리 턱 고정 | 정확한 지지·고정방법에 따라 수행하는지 여부 | 25 | 운반거리 기준
25m 이상: 15점
23m 이상: 12점
21m 이상: 9점
19m 이상: 6점
19m 미만: 0점 |
| | 익수자 운반
(가라앉은 익수자:
5kg) | 익수자를 수면으로 띄워 얼마나 운반하는지 여부 | | |

| | | | | |
|-------|------------------------|--|-----|--|
| | 구명조끼 착용법 | 착용법에 맞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는지 여부 | | |
| | 선박에서의 퇴선 방법 | 퇴선 시 상황별로 필요한 자세를 얼마나 안정되게 유지하는지 여부 | | |
| | 자동팽창식 구명뗏목 사용법 | 사용법에 맞게 뗏목을 사용하는지 여부 | | |
| | 로프 매듭법 | 상황별로 필요한 매듭방식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지 및 얼마나 숙련되었는지 여부 | | |
| 응급 처치 | 심폐소생술(성인) | 순서와 방법의 정확성 여부 | 10 | |
| | 심폐소생술
(소아/영아 중 택 1) | 순서와 방법의 정확성 여부 | | |
| | 의료장비(AED)평가 | 정확한 사용법에 따라 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지 여부 | | |
| 합 계 | | | 100 | |

2. 수상구조사 2급

| 과목 | 세부항목 | 채점기준 | 점수 | 비 고 |
|-------|--------------------------|---------------------------------------|----|--|
| 영법 | 잠영(25m) | 영법 순서대로 연속하여 실시하되, 제한 시간 이내에 완주하는지 여부 | 15 | 총 100m 기준
1분 50초 이내: 15점
1분 55초 이내: 12점
2분 00초 이내: 9점
2분 05초 이내: 6점
2분 05초 초과: 0점 |
| | 머리 들고 자유형(25m) | | | |
| | 평영(25m) | | | |
| | 트러젠(Trudgen Stroke, 25m) | | | |
| 수영 구조 | 입수법 | 주어진 상황에서 각 항목별로 정확하게 구조방법을 수행하는지 여부 | 15 | |
| | 접근법 | | | |
| | 구조법 | | | |
| | 운반법 | | | |
| | 풀기(앞·뒷목, 손목) | | | |
| 장비 구조 | 입수법 | 주어진 상황에서 각 항목별로 정확하게 구조방법 | 15 | |
| | 접근법 | | | |

| | 구조법 | 을 수행하는지 여부 | | |
|----------|------------------------------|---|-----|---|
| | 운반법 | | | |
| 기본
구조 | 입영 | 수면 위로 손목을 내놓은
상태로 다리만을 이용하여
물에 뜨는지 여부 | 20 | 물에 떠있는 시간 기준
2분 이상: 15점
1분50초 이상: 12점
1분40초 이상: 9점
1분30초 이상: 6점
1분30초 미만: 0점 |
| | 스컬링
(Sculling) | 손을 주로 사용하여 물에
뜨거나 수중에서 지정한
위치를 유지하는지 여부 | | |
| 종합
구조 | 머리지지/
머리 턱 고정 | 정확한 지지·고정방법에
따라 수행하는지 여부 | 20 | |
| | 익수자 운반
(가라앉은 익수자:
3kg) | 익수자를 수면으로 띄워
얼마나 운반하는지 여부 | | 운반거리 기준
25m 이상: 15점
23m 이상: 12점
21m 이상: 9점
19m 이상: 6점
19m 미만: 0점 |
| | 구명조끼 착용법 | 착용법에 맞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는지 여부 | | |
| 응급
처치 | 심폐소생술(성인) | 순서와 방법의 정확성 여부 | 15 | |
| | 심폐소생술
(소아/영아 중 택 1) | 순서와 방법의 정확성 여부 | | |
| | 의료장비(AED)평가 | 정확한 사용법에 따라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지 여부 | | |
| 합 계 | | | 100 | |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5. 12. 19.>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제12조의5제1항 관련)

1. 시설기준

| 구 분 | 세 부 내 용 |
|--------|---|
| 가. 강의실 | 강의실의 면적은 6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제곱미터 당 수용인원은 1명을 초과하지 않을 것 |
| 나. 수영장 | 세로 길이 25미터 이상, 최저수심 1미터 이상일 것 |
| 다. 사무실 | 교육생이 제출한 서류 등을 접수할 수 있는 창구와 휴게실을 설치할 것 |
| 라. 기 타 | 시설규모에 적합한 화장실 및 급수시설을 갖추고, 채광·환기 및 냉난방 시설 등 보건위생상 적절한 학습 환경을 갖추 것 |

2. 장비기준(교육생 20명 기준)

| 실습 구분 | 장비 종류 | 교육기관별 보유기준 | |
|---------|--------------------------|------------|--------------------------------------|
| | | 교육기관 종류 | 보유기준 |
| 가. 응급처치 | 1) 마네킹(성인, 영아) | 1급·2급 | 종류별로 교육생 2명당 1개 이상, 종류별로 각각 총 10개 이상 |
| | | 2급 | 종류별로 교육생 4명당 1개 이상, 종류별로 각각 총 5개 이상 |
| | 2) 교육용 자동제세동기(AED) | 1급·2급 | 교육생 2명당 1개 이상, 총 10개 이상 |
| | | 2급 | 교육생 10명당 1개 이상, 총 2개 이상 |
| | 3) 포켓마스크 또는 일회용 인공호흡 마스크 | 1급·2급 | 교육생 1명당 1개 이상, 총 20개 이상 |
| | | 2급 | 교육생 4명당 1개 이상, 총 5개 이상 |
| | 4) 부목, 삼각건 및 롤 붕대 세트 | 1급·2급 | 교육생 4명당 1세트 이상, 총 5세트 이상 |
| | | 2급 | 교육생 4명당 1세트 이상, 총 5세트 이상 |

| | | | |
|---------|------------------------------------|-------|---------------------------------------|
| 나. 수상구조 | 5) 들것(수상용 긴척추고정판) 및 담요 세트 | 1급·2급 | 교육생 4명당 1세트 이상, 총 5세트 이상 |
| | | 2급 | 교육생 10명당 1세트 이상, 총 2세트 이상 |
| | 1) 레스큐 튜브 | 1급·2급 | 교육생 2명당 1개 이상, 총 10개 이상 |
| | | 2급 | 교육생 2명당 1개 이상, 총 10개 이상 |
| | 2) 중량물(5kg, 3kg) | 1급·2급 | 종류별로 교육생 4명당 1개 이상, 종류별로 각각 총 5개 이상 |
| | | 2급 | 3kg 중량물로 한정하며, 교육생 4명당 1개 이상, 총 5개 이상 |
| | 3) 구명조끼 | 1급·2급 | 교육생 1명당 1개 이상, 총 20개 이상 |
| | | 2급 | 교육생 1명당 1개 이상, 총 20개 이상 |
| | 4) 로프(8~10mm×3m) | 1급·2급 | 교육생 1명당 1개 이상, 총 20개 이상 |
| | | 2급 | - |
| | 5) 구명뱃목 작동 연습 장비 | 1급·2급 | 총 1개 이상 |
| | | 2급 | - |
| | 6) 교육용 신호탄: 자기 발연신호, 신호홍염, 발연부신호 등 | 1급·2급 | 총 3개 이상 |
| | | 2급 | - |

※ 비교

교육기관 종류란에서 “1급·2급”은 수상구조사 1급·2급 교육과정을 모두 운영하는 교육기관을 말하고, “2급”은 수상구조사 2급 교육과정만 운영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3. 강사기준

| 구 분 | 인 원 | 자 격 기 준 |
|--------|-------|---|
| 가. 책임관 | 1명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법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상구조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경력 및 자격을 갖추었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 |

| | | |
|------------|-------|--|
| | | <p>는 사람(이하 “교육강사”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가) 최근 3년 이내에 10회 이상 수상구조사의 교육(전 과정을 모두 담당한 경우로 한정한다) 업무에 종사한 사람</p> <p>나) 최근 3년 이내에 400시간 이상 수상구조사의 교육업무에 종사한 사람</p> <p>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수상구조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p> |
| 나. 수상구조 강사 | 1명 이상 | <p>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1) 교육강사로서 연 3회 120시간 이상 강사 업무에 종사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수상구조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p> |
| 다. 응급처치 강사 | 1명 이상 | <p>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른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이하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이라 한다)을 소지한 사람(2급 응급구조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응급구조사 업무 또는 응급구조 관련 강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p> <p>2)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 2급 응급구조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p> <p>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2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응급구조사 업무 또는 응급구조 관련 강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p> <p>4)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정이 개설된 기관이나 단체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가) 최근 3년 이내에 3회 이상 응급처치 강사 업무(전 과정을 모두 담당한 경우로 한정한다)에</p> |

| | | |
|----------|-------|---|
| | | 종사한 사람
나) 최근 3년 이내에 120시간 이상 응급처치 강사
업무에 종사한 사람 |
| 라. 보조 강사 | 1명 이상 | 법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1급 자격을 취득
한 사람 |

※ 비교

1. 수상구조 강사의 자격기준과 응급처치 강사 자격기준을 모두 갖춘 사람의 경우에는 수상구조 강사와 응급처치 강사를 겸임할 수 있으며, 겸임하는 경우 각각의 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2. 보조 강사 자격기준과 응급처치 강사 자격기준을 모두 갖춘 사람의 경우에는 보조 강사와 응급처치 강사를 겸임할 수 있으며, 겸임하는 경우 각각의 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3. 12. 1.>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12조의6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제2호다목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교육업무를 수행하거나, 교육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 5) 그 밖에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법령 |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이 규칙 제12조의6 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 |
| 나. 교육기관 지정 기준 | 이 규칙 제 | 업무정지 | 업무정지 | 업무정지 | 지정취소 |

| 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 12조의6
제1항제2호 | 1개월 | 2개월 | 3개월 | |
|--|---------------------------|-------------|-------------|-------------|------|
| 다.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교육이
수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 이 규칙 제
12조의6
제1항제3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라. 정당한 사유 없이 1
년 이상 계속하여 교
육과정을 운영하지 않
은 경우 | 이 규칙
제12조의6
제1항제4호 | 경고 | 지정취소 | — | — |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5. 12. 19.>

수상구조사 교육과정(제12조의7제1항 관련)

(단위: 시간)

| 과 목 | | 강의 및 실습 시간 | |
|----------------------|---|-------------|-------------|
| | | 수상구조사
1급 | 수상구조사
2급 |
| 1. 수상구조사의 자세
(이론) | 가. 수상구조사의 임무와 책임 | 1 | 1 |
| | 나. 수상구조사의 자질과 정신 | 1 | 1 |
| | 소계 | 2 | 2 |
| 2. 조난사고의 이해
(이론) | 가. 재난상황의 이해 | 1 | 1 |
| | 나. 조난사고 다발지역 분석 | 1 | 1 |
| | 다. 해양환경 및 수상일반 | | |
| | 라. 안전사고 예방·순찰 활동 | 2 | 2 |
| | 계획 수립 및 점검 | 2 | |
| | 마. 사고의 대응 및 의사결정 | 2 | |
| 소계 | | 8 | 4 |
| 3. 관련 법령(이론) | 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 0.5 | 0.5 |
| | 나. 「선박안전법」 | 0.5 | 0.5 |
| | 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0.5 | 0.5 |
| | 라. 「수상레저안전법」 | 0.5 | 0.5 |
| | 소계 | 2 | 2 |
| 4. 응급처치(이론 및
실습) | 가. 기본 응급처치술(이론 및
실습) | 5 | 5 |
| | 1) 이론(2시간): 법적책임 및
심폐소생술 이론 | | |
| | 2) 실습(3시간): 환자평가, 심
폐소생술(성인, 소아, 영아),
기도폐쇄처치, AED 사용법 | | |
| | 나. 외상환자 응급처치(이론
및 실습) | 5 | 5 |
| | 1) 이론(2시간): 출혈, 쇼크,
척추손상 환자처치, 환자
고정 및 운반 | | |
| | 2) 실습(3시간): 상처 드레싱,
부목 고정 등 | | |
| | 다. 응급의료 장비 사용(실습): | 3 | |

| | | | |
|--------------|--|----|----|
| | 환자 고정 및 운반법, 수상
용 긴척추고정판 등의 응급
처치 장비 사용법 | | |
| | 소계 | 13 | 10 |
| 5. 구조기술(실습) | 가. 구조영법(머리틀고 자유형,
평영, 구조횡영, 구조배영) | 7 | 6 |
| | 나. 수영구조, 장비구조(레스큐
튜브) | 8 | 7 |
| | 다. 선상안전과 비상대응(구명
뗏목, 퇴선방법) | 7 | |
| | 라. 부상자 구조법 | 4 | |
| | 마. 생존수영 | 5 | 5 |
| | 소계 | 31 | 18 |
| 6. 종합구조 (실습) | 가. 종합구조(구조방법 등 반복
교육) | 6 | 4 |
| | 나. 로프사용법, 매듭법 | 2 | |
| | 소계 | 8 | 4 |
| 계 | | 64 | 40 |

※ 비교

1. 교육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교육과정 1회당 교육대상자는 40명을 초과할 수 없다.
3. 교육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3호라목에 따른 보조 강사를 배치해야 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구조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2호에 따른 조난사고의 이해(이론)
 - 나. 응급구조사, 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제4호에 따른 응급처치(이론 및 실습)
5. 제4호의 응급처치 과목은 응급환자를 성인과 영아로 구분하고 각각에 맞는 인공호흡, 이물질에 따른 기도막힘 처치, 심폐소생술을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성인과 영아를 대신하여 마네킹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6. 제5호 및 제6호의 구조기술 및 종합구조 과목 중 수영 관련 실습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기초 수영능력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기초 수영능력이 인정되는 교육대상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 가. 자유형, 평영이 각 50m 이상 가능할 것

나. 잠영이 10m 이상 가능할 것

7. 수상구조사 1급 교육과목 중 제5호나목의 수영구조, 장비구조(레스큐튜브) 실습은 가로 길이 10미터, 세로 길이 25미터 이상으로서 세로 길이 중 5미터 이상이 수심 2미터 이상인 수영장에서 실시해야 한다.
8. 수상구조사 1급 교육과목 중 제5호다목의 선상안전과 비상대응 실습은 구명뗏목 개방 절차와 퇴선 시 구명뗏목을 착용하고 안전하게 퇴선하는 실습을 말하며, 높이 3미터 이상의 다이빙대를 갖추고 그 하부의 수심이 3m 이상인 수영장에서 실시해야 한다.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1. 10. 8.>

수상구조사 자격 취소 및 정지 기준(제12조의1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효력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자격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효력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수상구조사로서 해당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 5) 그 밖에 수상구조사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법령 | 자격취소 및 정지 기준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 법 제30조의8 제1항제1호 | 자격취소 | | |
| 나.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격사유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30조의8 제1항제2호 | 자격취소 | | |
| 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 | 법 제55 | 자격취소 | | |

| | | | | |
|--|-----------------------|-------------|-------------|------------|
| 자격이 정지된 날부터 1
년이 경과한 경우 | 제30조의8
제1항제3호 | | | |
| 라. 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0조의8
제1항제4호 | 자격정지
3개월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정지
1년 |
| 마. 법 제30조의6에 따른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30조의8
제1항제5호 | 자격정지
3개월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정지
1년 |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7. 26.>

(앞 쪽)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 (On-Board SAR Plan)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5일 |
| 선명(Ship's Name) | | | |
| 선박번호(Registry No.) | | 선적항(Port of Registry) | |
| 선박소유자
(Ship's Owner) | | 선박임차인
(Ship's Charterer) | |
| 위성전화번호
(Satellite Tel. No.) | | | |

1. 선장은 승무원·여객 또는 해당 선박이 중대하고 급박한 수색구조 위험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아래에 적힌 해양경찰기관 중 가장 가까운 해양경찰기관과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연락을 하여야 한다.

Master of international passenger ship should contact with the nearest SAR Service enlisted as below when the vessel, crews or passengers are in grave and imminent danger, or in apprehension of grave and imminent danger by means of the most effective measures.

| 연락처
(Contact point of SAR service) | 전화
(Telephone No.) | 팩스
(Fax No.) | 텔레क्स
(Telex No.) | 기타
(Remarks) |
|---------------------------------------|-----------------------|-----------------|----------------------|-----------------|
| | | | | |
| | | | | |
| | | | | |
| | | | | |

※ 뒤쪽의 준수사항(제2호 ~ 제4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Approved by the Chief, Coast Guard Station.

년 월 일
Year Month D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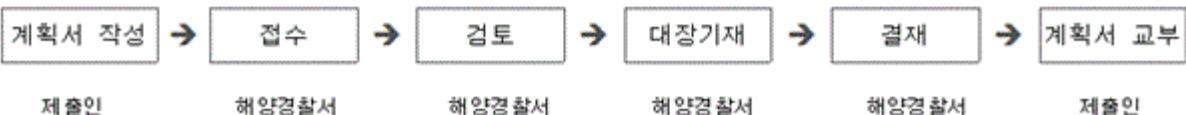
해양경찰서장

Chief, Coast Guard Station

직인

첨부서류 1. 구명설비배치도

처리절차



준수사항

2. 가장 가까운 해양경찰기관과 연락을 할 경우, 가능한 한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For the master of international passenger ship to make available to contact with SAR Service, the following contents shall be included, if possible, in the report.

- ①선명 ②선박번호 ③일시 ④위치 ⑤해난의 종류 및 손상상태 ⑥사상자 유무 ⑦기상상태
①Ship's Name ②Register Number ③Date ④Location(Latitude, Longitude) ⑤Nature of disaster ⑥
Whether the dead or injured persons are on board ⑦Condition of weather and sea state

3. 선박소유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구명설비배치도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The ship's Owner shall furnish layout of life-saving apparatus including followings.

- ①각종 구명설비의 위치 ②탈출경로 ③신호장치
①locations of life-saving apparatus ②routes of emergency escape ③signal apparatus.

4. 선박소유자는 비상수색구조상황을 가정한 여객선비상수색구조 훈련을 연 1회 이상 선장의 지휘로 실시하여야 하며, 훈련 시기와 방법은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Shipowner shall practice the emergency SAR exercise which assume the emergency situation at least once a year under the control of the master, and a period and way of exercise shall be arranged by conferring with the head of regional coast guard station and fire station.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7. 26.>

구난작업 신고서

| | | | |
|-----------|----------------------------------|----|--|
| 사고일시 | | 장소 | |
| 작업유형 | []인양 []이초(離礁) []예인 []그 밖의 유형 | | |
| 구난대상 | 선명 | 톤수 | |
| | 업종 | | |
|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 | |
| 작업인력 | | | |
| 동원장비 | | | |
| 작업계획 | | | |
| 해양오염방지대책 | | | |
| 항로장애여부정도 | | | |
| 그 밖의 참고사항 | | |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난작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양 경 찰 청 장 / 지 방 해 양 경 찰 청 장 / 해 양 경 찰 서 장
소 방 청 장 / 소 방 본 부 장 / 소 방 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7. 26.>

수난구조업무 종사명령서

종사 제 호

| | | |
|------------------|------|------|
| 종사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 |
| 종사 명세 | 업무 | |
| | 기간 | |
| | 장소 | |
| | 출동일시 | |
| 참고사항
(관련 자격증) | |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조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해양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서장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

직인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7. 26.>

시설·물자 등 사용통지서

사용 제 호

| | | |
|-------|---------|------|
| 소유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사용 명세 | 시설·물자명 | |
| | 수량 | |
| | 소재지 | |
| | 사용일 | |
| | 반환(예정일) | |
| | 반환장소 |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자 등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으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해양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서장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

직인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7. 26.>

시설·물자 등 사용증명서

사용 제 호

| | | |
|-------|---------|------|
| 소유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 |
| 사용 명세 | 시설·물자명 | |
| | 수량 | |
| | 소재지 | |
| | 사용일 | |
| | 반환(예정일) | |
| | 반환장소 |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자 등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해양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서장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

직인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1. 3.>

보상금(치료) 신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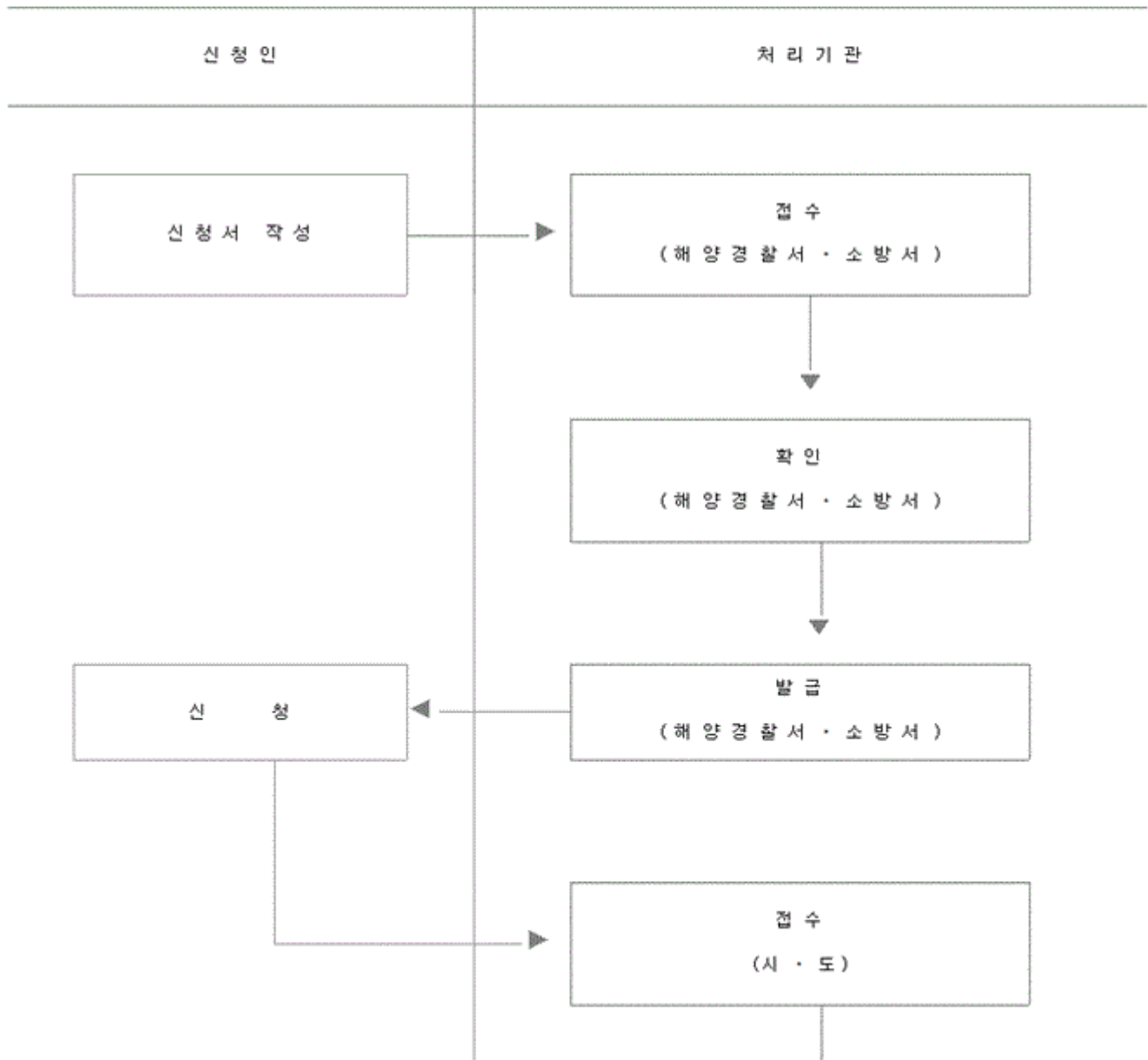
(앞쪽)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60일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 전화번호 | 구호종사자와의 관계 | |
| | 주소 | | |
| 구호종사자
(수난구호
참여자 또는
해양재난구조
대원 포함) | 성명 | 생년월일 | |
| | 수난구호 등 업무 내용 | 직업 | |
| | 주소 | | |
| 부상(사망)
명세 | 발생일시 | 발생장소 | |
| | 사고요지 | | |
| | 부상정도 | | |
| 치료를
받으려는
의료시설 | (보상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경우에 치료를 위한 기재란입니다.) | | |
| 위 사고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 | 지급 받은 날 | 지급자 | |
| | 내용(적용된 다른 법령) | | |
| | 금액 | | |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제30조제7항 및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치료)을 신청합니다. | | | |
| | | 년 | 월 일 |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
| 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 | | 해양경찰서장 (인)
또는 소방서장 (인) | |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
| 첨부서류 | 1. 사망진단서 및 유족(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임을 증명하는 서류(사망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병원진료확인서(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장애판정서(장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25. 1. 3.>

수난구조참여자 출동수당 신청서

|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60일 |
| 신청인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유류비
수급자 | 수급자의 성명 | | 생년월일 | |
| | 지급은행 및 계좌번호 | | | |
| | 선명(항공기명) | (톤) | 선종(기종) | |
| | 선장 또는 소유자 | | 기관마력 | |
| | 사용연료 | [] 경유 [] 휘발유 [] BA·BB유 등 중유 | | |
| 활동 명세 | 시간 | 년 월 일 : ~ 년 월 일 : (총 시간) | | |
| | 활동상세 | 호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 조치사항 | [] 선박수리 [] 화재진압 [] 인명구조 [] 환자후송 [] 예인
[] 해상수색 [] 수중수색 [] 예방활동 [] 기타 | | |
| 참여자
명단
(별첨가능) | 이름 | 생년월일 | 활동내용 | 지급은행 및 계좌번호 |
| | | | | |
| | | | | |
| | | | |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동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서장 귀하

| | |
|------|--|
| 첨부서류 |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제원과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류(유류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선박의 승선원 또는 항공기의 탑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선박에 승선하거나 항공기에 탑승한 사람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처리절차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검 토 | → | 결 재 | → | 지 급 |
| 신청인 | |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 |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 |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 | 신청인 |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10. 8.>

(앞 쪽)

| 항해계획통보(SAILING PLAN REPORT) | | | | | | | |
|---------------------------------------|---|--|--|--|--|--|--|
| (필수항목) | | | | | | | |
| 시 스템 명 통 보 항 목 | | | | | | | |
| ① | KOSREP / SP // | | | | | | |
| 선 명 호 출 부 호 | | | | | | | |
| A / / // | | | | | | | |
| 출 항 일 시 | | | | | | | |
| ② | B / // | | | | | | |
| 출 발 항 위 도 경 도 | | | | | | | |
| ③ | G / / / // | | | | | | |
| 목 적 항 위 도 경 도 도 착 예 정 일 시 | | | | | | | |
| I / / / / // | | | | | | | |
| 항 로 정 보 | | | | | | | |
| ④ | 항 법 구 간 속 력 위 도 경 도 도 착 예 정 일 시 지 명 | | | | | | |
| L / / / / / | | | | | | | |
| L / / / / / | | | | | | | |
| L / / / / / | | | | | | | |
| 의 료 요 원 의 승 선 | | | | | | | |
| ⑤ | V / // | | | | | | |
| JASREP AMVER 기 타 | | | | | | | |
| ⑥ | Y / / / // | | | | | | |
| (임의항목) | | | | | | | |
| 현 재 침 로 | | | | | | | |
| ⑦ | E / // | | | | | | |
| 예 정 평 균 속 력 | | | | | | | |
| F / // | | | | | | | |
| 현 재 청 취 중 인 해 안 국 다 음 청 취 예 정 해 안 국 | | | | | | | |
| M / / // | | | | | | | |
| 그 밖 의 사 항(65자 이내) | | | | | | | |
| ⑧ | X / // | | | | | | |
| ※ 뒤쪽의 기재요령을 읽고 영어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기 재 요 령

| | | |
|----------------------------|---|--|
| ① 시스템명등 | 시스템명은 「KOSREP」, 통보항목은 「SP」로 표시합니다. | |
| ② 출항일시 | 세계시를 사용하면 날짜는 2자리 숫자로, 시와 분은 네자리 숫자로 구성되는 6자리 숫자뒤에 「Z」로 표시합니다.
(예) 세계시 20일 12시00분의 경우: "201200Z" | |
| ③ 위도·경도 | 위도는 도와 분의 4자리 숫자로, 북위는 「N」, 남위는 「S」자를 붙이며 경도는 도 및 분의 5자리 숫자로, 동경은 「E」, 서경은 「W」자를 붙여서 표시합니다.
(예) 북위 35도 38분인 경우: 3538N, 동경 139도 50분인 경우: 13950E | |
| ④ L항목(항로정보) | 항법 | 연안항법은 「coastal」, 항정선행법은 「RL」, 대권항법은 「GC」로 표시합니다. |
| | 구간속력 | 해당 변침점에 도착할 때까지의 예정속력을 소수점 첫째자리까지의 3자리 숫자로 표시 (예) 속력 15.0노트의 경우: 150 |
| | 위도경도
도착 예정일시 | 변침점의 위도·경도 및 도착 예정일시를 ②, ③의 예에 따라 표시합니다. |
| | 지명 | 해당 변침점 부근에서의 해역명 또는 육표명을 가능한 한 표시합니다. |
| ⑤ V항목
(의료요원의 승선) | MD(의사), PA(위생관리자), NURSE(간호사), NONE(없음)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 |
| ⑥ Y항목
(JASREP, AMVER 등) | KOSREP에 참가함과 동시에 JASREP, AMVER 또는 그 밖에 외국 선박위치통보 가입 희망 시 표시합니다. | |
| ⑦ E, F, M 항목
(임의항목) | 필수기재사항은 아니나 표시할 경우, E항목의 현재 침로는 3자리 숫자로 표시하여, F항목의 전체 항정의 예정 평균속력은 소수점 첫째자리를 포함한 3자리 숫자로 표시합니다.
(예) 침로 234도의 경우 E / 234 //로, 속력 15.3노트인 경우는 F / 153 // | |
| ⑧ X항목(참고사항) | 임의항목으로, 기상정보(풍향·풍속·파고·천기), 다음 통보 예정시각, 적하의 종류, INMARSAT 전화번호, 디지털선택호출(DSC: Digital Selective Calling)의 ID번호, FAX번호 등을 표시합니다.
(예) 차기 통보 예정시각: 25일 15시00분, 적하의 종류: LNG, INMARSAT 전화번호: 1234567의 경우 X / 251500 Z / LNG / SAT 1234567 // | |

[별지 제8호서식]

| 위치통보(POSITION REPORT) | | | |
|----------------------------------|--|--|--|
| (필수항목) | | | |
| 시 스템 명 통 보 항 목 | | | |
| KOSREP / PR // | | | |
| 선 명 호 출 부 호 | | | |
| A / / // | | | |
| 위 치 일 시 | | | |
| B / // | | | |
| 위 도 경 도 | | | |
| C / / // | | | |
| JASREP AMVER 기 타 | | | |
| Y / / / // | | | |
| (임의항목) | | | |
| 현 재 침 로 | | | |
| E / // | | | |
| 예 정 평 균 속 력 | | | |
| F / // | | | |
| 현재 청취 중인 해안국 다음 청취 예정 해안국 | | | |
| M / / // | | | |
| 그 밖 의 사 항 (65자 이내) | | | |
| X / // | | | |
| ※ 별지 제7호서식의 기재요령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

210mm × 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 변경통보(DEVIATION REPORT) | | | | | | | |
|---|--|--------------|--|-----|--|---------|--|
| (필수항목) | | | | | | | |
| 시 스템 명 | | 통 보 항 목 | | | | | |
| KOSREP | | / DR | | // | | | |
| 선 명 | | 호 출 부 호 | | | | | |
| A / | | / | | // | | | |
| JASREP | | AMVER | | | | | |
| Y / | | / | | // | | | |
| (임의항목) | | | | | | | |
| 출 발 일 시 | | | | | | | |
| B / | | // | | | | | |
| 현 재 침 로 | | | | | | | |
| E / | | // | | | | | |
| 예 정 평 균 속 력 | | | | | | | |
| F / | | // | | | | | |
| 출 발 지 | | 위 도 | | 경 도 | | | |
| G / | | / | | / | | | |
| 목 적 지 | | 위 도 | | 경 도 | | 도착 예정일시 | |
| I / | | / | | / | | // | |
| 항 로 정 보 | | | | | | | |
| 항 법 구 간 속 력 위 도 경 도 도 착 예 정 일 시 지 명 | | | | | | | |
| L / | | / | | / | | // | |
| 현재 청취 중인 해안국 | | 다음 청취 예정 해안국 | | | | | |
| M / | | / | | // | | | |
| 의료요원의 승선 | | | | | | | |
| V / | | // | | | | | |
| 그 밖 의 사 항 (65자 이내) | | | | | | | |
| X / | | // | | | | | |
| ※ 별지 제7호서식의 기재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임의항목 중 변경사항은 반드시 적으시기 바랍니다. | | | | | | | |

[별지 제10호서식]

| 최종통보(FINAL REPORT) | | | | |
|---|--|--|--|--|
| (필수항목) | | | | |
| 시 스템 명 통 보 항 목 | | | | |
| KOSREP / FR // | | | | |
| 선 명 호 출 부 호 | | | | |
| A / / // | | | | |
| 도 착 항 명 위 도 경 도 도 착 일 시 | | | | |
| K / / / // | | | | |
| JASREP AMVER 기 타 | | | | |
| Y / / / // | | | | |
| (임의항목) | | | | |
| 그 밖의 사항 (65자 이내) | | | | |
| X / // | | | | |
| <p>※ 별지 제7호서식의 기재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p> | | | | |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7. 7. 26.>

수난구조비용 청구서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30일 |
| 청구인 | 성명 | 생년월일 | |
| | 주소 | 전화번호 | |
| 종사업무 | | | |
| 구조 명세 | 유형 | 내용 | |
| | 동원장비 | | |
| | 사용시설 등 | | |
| | 기타 | | |
| 구조비용 | 금액 | | |
| | 산출근거 | *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 구조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수난구조기관의 장 확인

해양경찰서장 (인)
또는 소방서장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 | | | | |
|--------|--|--------------|---|--------------|---|--------------|---|-----|---|--------------|
| 첨부서류 | 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조비용의 산출근거 | | | | | | | | | |
| 처리절차 | | | | | | | | | | |
| 청구서 작성 | → | 접수 | → | 결재 | → | 발급 | → | 신청 | → | 접수 |
| 청구인 | | 해양경찰서
소방서 | | 해양경찰서
소방서 | | 해양경찰서
소방서 | | 청구인 | | 특별자치도, 시·군·구 |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수상안전종합관리시스템(<http://imsa.kcg.go.kr>)

<개정 2025. 12. 19.>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 뒤쪽의 응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응시자가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응시등급 | 확인자 |
|------|---------|--------|-----------------------|
| 응시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응시등급 |
| | 주소 | | 사진
(3.5cm × 4.5cm) |
| | 자택 전화번호 | | |
| | 휴대전화번호 | | |
| | 이메일 주소 | |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시험관리기관의 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제 12조의7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
2. 경력증명서(수상구조 분야 업무 경력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응시자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5cm×세로 4.5cm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 2매 | 수수료
필기시험: 10,000원
실기시험: 30,000원
면접시험: 50,000원 |
|------|--|--|

응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응시자격, 시험일시·장소 등은 시험시행 공고에 따릅니다.
2. 응시원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합니다.
3. 응시등급란에는 응시하려는 수상구조사 자격 등급을 적습니다.
4. 응시원서의 사진란에는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5cm×세로 4.5cm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을 붙입니다.

[illegible]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5. 12. 19.>

(앞쪽)

응 시 표

| | | | | | |
|-------------|------|------|------|----|-----------------------|
| 응
시
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응시등급 |
| | 주소 | | | | 사진
(3.5cm × 4.5cm) |
| | 전화번호 | 자택 | | | |
| | | 휴대전화 | | | |
| | 이메일 | | | | |
| 응시
횟수 | 시험일시 | 응시번호 | 시험종류 | 판정 | 확인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8 | | | | | |
| 9 | | | | | |
| 10 | | | | | |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mm × 297mm [백상지 (150g/m²)]

(뒤쪽)

수입인지 붙이는 곳

| | | | | |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유의사항

1. 자격시험은 지정된 응시시간 30분 전까지 입실을 마쳐야 합니다.
2. 시험장에는 반드시 응시표·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것을 말합니다)을 지참하여 입장을 완료해야 합니다.
3. 불합격된 사람이 다시 응시하려면 이 응시표를 보관하였다가 접수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4. 부정행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되고 2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5. 12. 19.>

시험성적표

[illegible]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5. 12. 19.>

제 호

수상구조사 자격증

성 명 :

생년월일 :

자격등급 :

자격번호 :

자격취득일 :

유효기간 :

사진
(3.5cm×4.5cm)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상구조사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00지방해양경찰청장

직인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Annex Form No. 16 of Enforcement Regulations under the Act On The Search And Rescue,
Etc. In Waters

No.001

National Lifeguard Certification

Nam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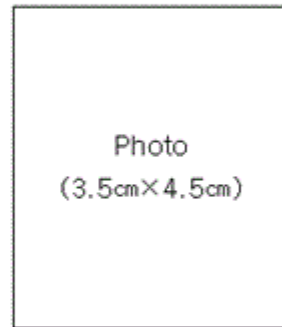
Date of Birth : (Month, Date, Year)

Grade of Qualification :

Certification Number :

Date of Issue : (Month, Date,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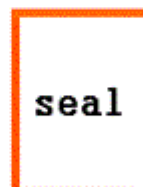
Date of Expiration : (Month, Date, Year)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30-2, Paragraph 4 of the 「Act On The Search And Rescue,
Etc. In Waters」 and Article 12-4, Paragraph 1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same
Act, we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mentioned person is qualified to be a National
Lifeguard.

(Month, Date, Year)

Commissioner of
Korea Coast Guard
Region - 00



210mm×297mm[woodfree paper(80g/m²) or medium quality paper(80g/m²)]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수상안전종합관리시스템(<http://ism.kcg.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5. 12. 19.>

수상구조사 자격증 재발급(갱신)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에는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4일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 주소 | | |
| 자격
취득
사항 | 자격번호 | 자격등급 | |
| | 자격증 발급일 | 유효기간 | |
| 신청사유 | | |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상구조사 자격증의 재발급(갱신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0지방해양경찰청장 귀하

| | |
|------|--|
| 첨부서류 | 1. 자격증(분실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 신청인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5cm×세로 4.5cm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 1매
3.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11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수료증(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자격증을 갱신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결재



자격증 재작성



자격증 발급

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5. 12. 19.>

수상구조사 자격대장

| | | | | |
|------|------|------|------|-----------------------|
| 성명 | | 생년월일 | | 사진
(3.5cm × 4.5cm) |
| 전화번호 | 자택 | | | |
| | 휴대전화 | | | |
| 주소 | | | | |
| 이메일 | | | | |
| 자격등급 | 자격번호 | 발급일 | 발급번호 | |
| | | | | |
| 기재사항 | | | | |
| 접수번호 | 연월일 | 내용 | | |
| | | | | |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5. 12. 19.>

수상구조사 자격증 재발급(갱신) 대장

[illegible]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수상안전종합관리시스템(<http://imsa.kcg.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5. 12. 19.>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에는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0일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 주소
(전화) | | |
| 신청
기관·단체 | 명칭 | 운영 예정 교육과정
[] 수상구조사 1급·2급 모두
[] 수상구조사 2급만 | |
|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 | 소재지
(전화) | | |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 주소
(전화) | |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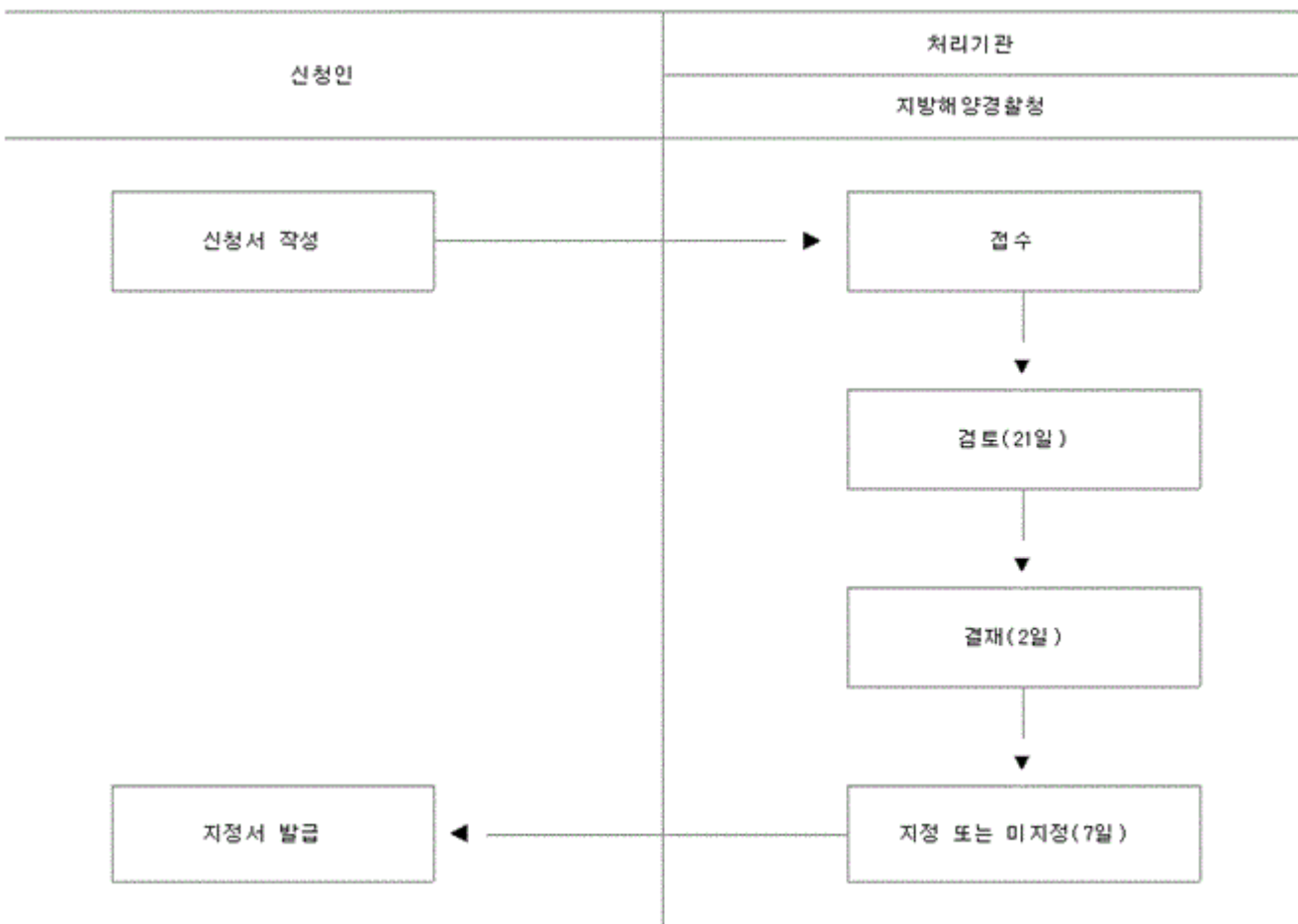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경찰청장 귀하

| | |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교육기관 운영계획서 1부
2.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시설 사용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 |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5. 12. 19.>

제 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서

| | | |
|------|-----------------|------------|
| 교육기관 | 명칭 | 운영 가능 교육과정 |
|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 소재지 | |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위 기관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5제1항·제4항에 따라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경찰청장

직인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3. 12. 1.>

제 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 지정취소 ☐ 업무정지 통지서

| | | | | | | | | |
|--------------|--|-----------------|--|--|--|--|--|--|
| 교육기관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 | | |
| | 소재지 | | | | | | | |
| | 전화번호 | | | | | | | |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 | | |
| | 주소 | | | | | | | |
| 행정처분
결정내용 | 지정취소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div> | | | | | | | |
| | 업무정지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일간)</div> | | | | | | | |
| 사유 | | | | | | | |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기관 ([]지정취소 []업무정지)처분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지방해양경찰청에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서를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五、四、三

지방해양경찰청장

직인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5. 12. 19.>

제 호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

| | | |
|------|--------|---------------------|
| 수료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교육내용 | 교육기관 | |
| | 교육과정 | |
| | 교육기간 | 20 . . . ~ 20 . . . |
| | 총 이수시간 | |

위 사람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7제2항에 따라 수상구조사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교육기관의 장

직인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서식] <신설 2019. 7. 10.>

수상구조사 결격사유 통보대장

[illegible]

210mm × 297mm [백상지 80g/m²(재활용품)]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5. 12. 19.>

제 호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수료증

| | | |
|------|--------|---------------------|
| 수료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자격등급 |
| | 자격번호 | 유효기간 |
| 교육내용 | 교육기관 | |
| | 교육기간 | 20 . . . ~ 20 . . . |
| | 총 이수시간 | |

위 사람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11제2항에 따라 수상구조사 보수교육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해양경찰서장

직인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5. 12. 19.>

제 호

수상구조사 자격 [] 취소 [] 정지 통지서

| | | |
|--------------|------------------------------|--|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자격등급 | |
| 자격 번호 | 번호 | |
| 행정처분
결정내용 | 정지처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간) | |
| | 취소처분
년 월 일 | |
| 사유 | |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8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수상구조사 자격 취소처분이 결정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12에 따라 통지하오니 수상구조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으신 분은 년 월 일까지 지방해양경찰청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 수상구조사 자격 정지처분이 결정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12에 따라 통지하오니 정지처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년 월 일까지 지방해양경찰청에 자격증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경찰청장

직인

유의사항

1.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처분 결정내용에 따라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 집행됩니다.
2. 자격증 취소처분·정지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행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행정소송은 1년)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26.] [법률 제19573호, 2023. 7. 25.,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044 - 200 - 6221, 6222

제1장 총칙 <개정 2009. 12. 29.>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1. “해양사고”란 해양 및 내수면(內水面)에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 가.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
 - 나.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이나 육상시설·해상시설이 손상된 사고
 - 다. 선박이 멸실·유기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고
 - 라. 선박이 충돌·좌초·전복·침몰되거나 선박을 조종할 수 없게 된 사고
 - 마.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해양오염 피해가 발생한 사고
- 1의2. “준해양사고”란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시정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면 선박과 사람의 안전 및 해양환경 등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태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2.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을 항행하거나 항행할 수 있는 구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란 해양사고의 원인과 관련된 자로서 제39조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 3의2. “이해관계인”이란 해양사고의 원인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로서 해양사고의 심판 또는 재결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한다.
4. “원격영상심판(遠隔映像審判)”이란 해양사고관련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관할 해양안전심판원 외의 원격지 심판정(審判庭) 또는 이와 같은 장치가 갖추어진 시설로서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이 지정하는 시설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심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3조(심판원의 설치)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안전심판원(이하 “심판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2. 29.]

제4조(해양사고의 원인규명 등) ① 심판원이 심판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혀야 한다.

1.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
2. 선박승무원의 인원, 자격, 기능, 근로조건 또는 복무에 관한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3. 선박의 선체 또는 기관의 구조, 재질, 공작이나 선박의 의장(艤裝) 또는 성능에 관한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4. 수로도지(水路圖誌)、항로표지、선박통신、기상통보 또는 구난시설 등의 항해보조시설에 관한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5. 항만이나 수로의 상황에 관한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6. 화물의 특성이나 적재에 관한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② 심판원은 제1항에 따른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힐 때 해양사고의 발생에 2명 이상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관련자에 대하여 원인의 제공 정도를 밝힐 수 있다.

③ 심판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2. 29.]

제5조(재결) ① 심판원은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재결(裁決)로써 그 결과를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심판원은 해양사고가 해기사나 도선사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재결로써 해당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③ 심판원은 필요하면 제2항에 규정된 사람 외에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다만,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 6. 15.>
[전문개정 2009. 12. 29.]

제5조의2(시정 등의 요청) 심판원은 심판의 결과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정하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양사고관련자가 아닌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정 또는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6조(징계의 종류와 감면) ① 제5조제2항의 징계는 다음 세 가지로 하고, 행위의 경중(輕重)에 따라서 심판원이 징계의 종류를 정한다.

1. 면허의 취소

2. 업무정지

3. 견책(譴責)

② 제1항제2호의 업무정지 기간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한다.

③ 심판원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 해양사고의 성질이나 상황 또는 그 사람의 경력과 그 밖의 정상(情狀)을 고려하여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6조의2(징계의 집행유예) ① 심판원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 중 그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징계를 재결하는 경우에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징계재결과 함께 3개월 이상 9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징계의 집행유예(이하 “집행유예”라 한다)를 재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징계재결을 받은 사람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판원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 6. 15.]

제6조의3(직무교육의 이수명령) ① 심판원은 제6조의2에 따라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는 때에는 그 유예기간 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은 심판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교육기관에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심판원 또는 위탁 교육기관은 교육생으로부터 소정의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무교육의 기간, 내용 등 직무교육 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판원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 6. 15.]

제6조의4(집행유예의 실효) 제6조의2에 따라 징계의 집행유예 재결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의 재결은 효력을 잃는다.

1. 집행유예기간 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집행유예기간 중에 업무정지 이상의 징계재결을 받아 그 재결이 확정된 경우

[본조신설 2011. 6. 15.]

제6조의5(집행유예의 효과) 제6조의2에 따라 징계의 집행유예 재결을 받은 후 그 집행유예의 재결이 실효됨이 없이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때에는 징계를 집행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 6. 15.]

제7조(일사부재리) 심판원은 본안(本案)에 대한 확정재결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거듭 심판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7조의2(공소 제기 전 심판원의 의견청취) 검사는 해양사고가 발생하여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7조의3(심판정에서의 용어) ① 심판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한다.

② 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진술은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2장 심판원의 조직 <개정 2009. 12. 29.>

제8조(심판원의 조직) ① 심판원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과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이라 한다)의 2종으로 한다.

② 각급 심판원에 원장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심판관을 둔다.

③ 중앙심판원의 조직과 지방심판원의 명칭·조직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9조(중앙심판원장 및 지방심판원장) ① 중앙심판원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이하 “중앙심판원장”이라 한다)을, 지방심판원에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이하 “지방심판원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중앙심판원장 및 지방심판원장은 제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2013. 3. 23., 2023. 9. 14.>

③ 삭제<2023. 9. 14.>

[전문개정 2009. 12. 29.]

제9조의2(심판관의 임명 및 자격) ①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은 중앙심판원장의 추천을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②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2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 또는 운항사의 해기사면허(이하 “2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라 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3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행정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력 연수를 합산하여 4년 이상인 사람

③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23. 9. 14.>

1. 1급 항해사, 1급 기관사 또는 1급 운항사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 3년 이상 승선한 사람
2. 2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2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후 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서 선박의 운항 또는 선박용 기관의 운전에 관한 과목을 3년 이상 가르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력 연수를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5.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09. 12. 29.]

제10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판원장이나 심판관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11조(심판원장 및 심판관의 직무) ① 중앙심판원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2. 18.>

1. 중앙심판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2. 중앙심판원의 심판부를 구성하고 심판관 중에서 심판장을 지명한다. 다만, 특히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는 스스로 심판장이 될 수 있다.
3. 지방심판원의 일반사무를 지휘·감독한다.
4. 각급 심판원의 심판관에 결원이 생기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은 지방심판원장으로,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은 다른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으로 하여금 심판관의 직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심판원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지방심판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2. 해당 지방심판원의 심판부를 구성하고 심판장이 된다.

③ 심판관은 심판직무에 종사한다.

④ 심판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심판원의 심판관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심판업무 외의 업무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석조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12조(심판직무의 독립) 심판장과 심판관은 독립하여 심판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13조(심판관의 신분 및 임기) ① 심판원장과 심판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 3. 24.>

- ② 심판원장과 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심판원장과 심판관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감봉이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④ 심판원장과 심판관의 임용요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다.<개정 2011. 6. 15., 2014. 3. 24., 2018. 12. 31.>

[전문개정 2009. 12. 29.]

제13조의2(심판관의 전보) 해양수산부장관은 심판업무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13조제2항의 임기 중인 지방심판원장 또는 각급 심판원의 심판관을 다른 심판원의 해당 직급에 전보(轉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2. 29.]

제14조(비상임심판관) ① 각급 심판원에 비상임심판관을 두되, 비상임심판관은 그 직무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급 심판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심판원장은 중앙심판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2. 31.>

- ② 비상임심판관은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이 특히 곤란한 사건의 심판에 참여한다.
- ③ 심판에 참여하는 비상임심판관의 직무와 권한은 심판관과 같다.
- ④ 각급 심판원장은 비상임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임심판관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심판원장은 중앙심판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8. 12. 31.>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비상임심판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심판과 관련된 비위(非違)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비상임심판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6.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⑤ 각급 심판원에 두는 비상임심판관의 수와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12. 31.>

[전문개정 2009. 12. 29.]

제15조(심판관·비상임심판관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판관(심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비상임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이 해양사고관련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3.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의 심판변론인이나 대리인으로 심판에 관여한 경우
 4.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조사관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
 5.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이 전심(前審)의 심판에 관여한 경우
 6.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이 심판 대상이 된 선박의 소유자·관리인 또는 임차인인 경우
 - ②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과 비상임심판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이 불공평한 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심판정에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이미 진술을 한 사람은 제2항제2호의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기피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다만, 기피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을 때 또는 기피 사유가 그 후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
 - ⑤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결정은 그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의 소속 심판원 합의체심판부에서 한다. 다만, 특별심판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특별심판부가 구성된 지방심판원 합의체심판부에서 결정한다.
- [전문개정 2009. 12. 29.]

제16조(조사관 등) ① 각급 심판원에 수석조사관, 조사관 및 조사사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둔다.

② 제1항의 수석조사관, 조사관 및 조사사무를 보조하는 직원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16조의2(조사관의 자격) ① 중앙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이하 “중앙수석조사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9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3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행정에 3년(해양안전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 이상 근무한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의 경력 연수를 합산하여 4년 이상인 사람

② 중앙심판원의 조사관과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이하 “지방수석조사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제9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17조(조사관의 직무) 수석조사관과 조사관은 해양사고의 조사, 심판의 청구, 재결의 집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담당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18조(조사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① 조사관은 조사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② 조사관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중앙수석조사관은 조사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모든 조사관을 지휘·감독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는 중앙심판원의 조사관과 지방수석조사관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11. 6. 15.]

제18조의2(조사관 직무의 위임·이전 및 승계) ① 중앙수석조사관 또는 지방수석조사관은 소속 조사관으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앙수석조사관 또는 지방수석조사관은 소속 조사관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조사관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6. 15.]

제18조의3(특별조사부의 구성) ① 중앙수석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사고로서 심판청구를 위한 조사와는 별도로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조사부를 구성할 수 있다.

1. 사람이 사망한 해양사고
2. 선박 또는 그 밖의 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는 등 피해가 매우 큰 해양사고
3. 기름 등의 유출로 심각한 해양오염을 일으킨 해양사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해양사고 외에 해양사고 조사에 국제협력이 필요한 해양사고 및 준해양사고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조사부(이하 “특별조사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별조사부의 장은 조사관 중에서 중앙수석조사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특히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는 중앙수석조사관이 스스로 특별조사부의 장이 될 수 있다.

1. 조사관(수석조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해양사고와 관련된 관계 기관의 공무원
3. 해양사고 관련 전문가

③ 특별조사부의 장은 조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앙수석조사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제출받은 중앙수석조사관은 그 보고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제해사기구에 송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에 따른 보고대상 해양사고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중앙수석조사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중앙수석조사관은 특별조사부의 해양사고 조사가 종료된 후에 그 해양사고 조사 결과를 변경시킬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해양사고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
- ⑥ 특별조사부의 해양사고 조사는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사법절차, 심판청구를 위한 조사절차 및 행정처분절차 또는 행정쟁송절차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특별조사부의 조사관에 대하여는 제18조 및 제18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⑦ 특별조사부의 해양사고 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공개한다. 다만, 해당 해양사고 조사나 장래의 해양사고 조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⑧ 해양사고의 조사절차, 조사보고서의 작성방법 등 특별조사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1. 6. 15.]

제19조(조사관 일반사무의 지휘·감독) 심판원장은 조사관의 일반사무를 지휘·감독한다. 이 경우 조사관의 고유사무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20조 삭제 <1999. 2. 5.>

제20조의2(심판관 및 조사관 등의 연수교육) 중앙심판원장은 심판관, 조사관 및 그 밖의 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2. 29.]

제21조(심급) 지방심판원은 제1심 심판을 하고, 중앙심판원은 제2심 심판을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22조(심판부의 구성 및 의결) ① 지방심판원은 심판관 3명으로 구성하는 합의체에서 심판을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건 및 제38조의2에 따른 약식심판 사건에 관하여는 1명의 심판관이 심판을 한다. <개정 2011. 6. 15.>

② 중앙심판원은 심판관 5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합의체에서 심판을 한다.

③ 각급 심판원은 제14조제2항에 규정된 사건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지명하는 비상임심판관 2명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합의체심판부는 합의체를 구성하는 심판관(심판장과 비상임심판관을 포함한다)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22조의2(특별심판부의 구성) ① 중앙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사고 중 그 원인규명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에 특별심판부를 구성할 수 있다.

1. 10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해양사고
2. 선박이나 그 밖의 시설의 피해가 현저히 큰 해양사고
3. 기름 등의 유출로 심각한 해양오염을 일으킨 해양사고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심판부는 해당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에 전문지식을 가진 심판관 2명과 그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장으로 구성하되, 지방심판원장이 심판장이 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23조(심판부의 직원) ① 심판부에 서기, 심판정 경위(警衛) 및 심판 보조직원을 둔다.

- ② 서기는 심판에 참석하며 심판장과 심판관의 명을 받아 서류의 작성·보관 또는 송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 ③ 심판정 경위는 심판장의 명을 받아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담당한다.
- ④ 심판 보조직원은 심판장과 심판관의 명을 받아 증거조사 및 서기업무를 제외한 심판 보조업무를 담당한다.
- ⑤ 서기, 심판정 경위 및 심판 보조직원은 심판원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임명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2장의2 심판원의 관할 <개정 2009. 12. 29.>

제24조(관할) ① 심판에 부칠 사건의 관할권은 해양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에 속한다. 다만, 해양사고 발생 지점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심판원에 속한다.

- ② 하나의 사건이 2곳 이상의 지방심판원에 계속(係屬)되었을 때에는 최초의 심판청구를 받은 지방심판원에서 심판한다.
- ③ 하나의 선박에 관한 2개 이상의 사건이 2곳 이상의 지방심판원에 계속되었을 때에는 최초의 심판청구를 받은 지방심판원이 심판한다.<개정 2018. 12. 31.>
- ④ 하나의 선박에 관한 2개 이상의 사건을 심판하는 지방심판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나 심판변론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심판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 ⑤ 국외에서 발생한 사건의 관할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25조(사건 이송) ① 지방심판원은 사건이 그 관할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이를 관할 지방심판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송을 받은 지방심판원은 다시 사건을 다른 지방심판원에 이송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라 이송된 사건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지방심판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26조(관할 이전의 신청) ① 조사관이나 해양사고관련자는 해당 해양사고의 해양사고관련자가 관할 지방심판원에 출석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판원에 관할의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관할 지방심판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심판원은 지체 없이 중앙심판원에 보내야 한다.

② 중앙심판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심판상 편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관할을 이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3장 심판변론인 <개정 2009. 12. 29.>

제27조(심판변론인의 선임) ① 해양사고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은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해양사고관련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심판변론인은 중앙심판원에 심판변론인으로 등록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 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선임한 심판변론인이 2명 이상이면 대표심판변론인 1명을 선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28조(심판변론인의 자격과 등록) ① 심판변론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1. 제9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2. 심판관 및 조사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1급 항해사, 1급 기관사 또는 1급 운항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해사 관련 법률 자문업무에 종사하였거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사 관련 분야의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심판변론인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판원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전문개정 2009. 12. 29.]

제28조의2(심판변론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판변론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 12. 31.>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9조의2에 따라 등록이 취소(「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09. 12. 29.]

제29조(심판변론인의 업무 등) ① 심판변론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사고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이 이 법에 따라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청구·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2. 해양사고관련자 등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② 심판변론인은 수임(受任)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심판변론인 또는 심판변론인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29조의2(심판변론인의 등록의 취소) 중앙심판원장은 심판변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판변론인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없거나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2. 제2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사망한 경우

[본조신설 2018. 12. 31.]

제30조(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에는 심판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권으로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 중에서 심판변론인(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3.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인 경우
4. 해양사고관련자가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② 심판원은 해양사고관련자가 빈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양사고관련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판변론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심판원은 해양사고관련자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고려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판변론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사고관련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변론인의 선정 등 국선심판변론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6. 15.]

제30조의2(심판변론인협회) ① 심판변론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심판변론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30조의3(사업) 협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해양사고관련자의 심판구조사업
2. 해양사고의 방지에 관한 사업
3. 심판변론인과 위임인 간의 분쟁조정
4. 그 밖에 심판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 12. 29.]

제30조의4(설립절차 등) 협회의 설립절차, 정관의 기재 사항, 임원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30조의5(「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4장 심판 전의 절차 <개정 2009. 12. 29.>

제31조(해양수산물관서 등의 의무) ① 해양수산물관서, 경찰공무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여 관할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2020. 12. 22.>

② 조사관이 해양사고에 관한 증거 수집이나 조사를 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면 그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31조의2(준해양사고의 통보) ①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자는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준해양사고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수석조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중앙수석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분석하여 선박과 사람의 안전 및 해양환경 등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등 관계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③ 중앙수석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준해양사고를 통보한 자의 의사에 반하여 통보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1. 6. 15.]

제32조(영사의 임무) ① 영사는 국외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증거를 수집하여 중앙수석조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수석조사관은 제1항의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관할 지방수석조사관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33조(사실조사의 요구) ① 해양사고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여 관할 조사관에게 사실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조사관은 사실조사를 하여 심판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요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조사관이 제2항의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리 중앙수석조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 9. 14.>

[전문개정 2009. 12. 29.]

제34조(해양사고의 조사 및 처리) ① 조사관은 해양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은 조사 결과 사건을 심판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불필요처분(審判不必要處分)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35조(증거보전) ①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이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채택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증거보전을 신청할 때에는 심판원은 심판청구 전이라도 검증 또는 감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5.>

② 제1항의 신청에는 서면으로 증거를 표시하고 그 증거보전의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③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원이나 선박의 안전 확보, 해양환경의 보호 등 공공의 중대한 이익 보호 또는 인명 구조 등을 위하여 제5호에 따른 행위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3. 24., 2018. 12. 31., 2023. 7. 25., 2023. 9. 14.>

1. 해당 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에 비치하거나 기록·보관하는 다음 각 목의 간행물 또는 서류 등(전자적 간행물 또는 서류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기록물”이라 한다)의 파기 또는 변경

가. 「선박안전법」 제32조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선박에 비치하여야 하는 항해용 간행물

나. 「선원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선장이 선내에 비치하여야 하는 서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장이 기록·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2. 해당 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으로서 「해상교통안전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가 해당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작성·보관하거나 선박에 비치하는 기록물의 파기 또는 변경
3. 해당 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으로서 제2호에 따른 선박 외의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선박관리사업자가 해당 선박의 운용, 선원의 관리 또는 선박의 정비와 관련하여 작성·보관하는 기록물의 파기 또는 변경
4. 해당 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는 기관 사이의 선박교통관제와 관련하여 작성·보관되는 기록물의 파기 또는 변경
5. 해당 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의 손상된 선체·기관 및 각종 계기(計器)와 그 밖의 부분에 대한 수리
- ④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선박시설기준에서 정하는 항해자료기록장치(이하 이 항에서 “항해자료기록장치”라 한다)를 설치한 선박의 선장은 해당 선박과 관련하여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항해자료기록장치의 정보를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4. 3. 24.>

[전문개정 2009. 12. 29.]

제36조(비밀준수의무) 조사관이나 그의 보조자는 사실조사와 증거수집을 할 때 비밀을 준수하고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37조(조사관의 권한) ① 조사관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해양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거나 그 사람에게 질문하는 일
2. 선박이나 그 밖의 장소를 검사하는 일
3. 해양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일
4. 관공서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구하는 일
5.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증언·감정·통역·번역을 하게 하는 일
- ② 제1항제1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조사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관서에 대하여 72시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자의 하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조사관이 제1항제2호의 처분을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38조(심판의 청구) ① 조사관은 사건을 심판에 부쳐야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지방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이 발생한 후 3년이 지난 해양사고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청구는 해양사고사실을 표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38조의2(약식심판의 청구) ①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해양사고로서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약식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양사고관련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람이 사망하지 아니한 사고
2. 선박 또는 그 밖의 시설의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지 아니한 사고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된 사고

② 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의 청구는 심판청구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6. 15.]

제39조(해양사고관련자의 지정과 통지) ① 조사관은 제38조에 따라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해양사고 발생의 원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를 지정하면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0. 2. 18.>

[전문개정 2009. 12. 29.]

[제목개정 2020. 2. 18.]

제39조의2(이해관계인의 심판신청) ① 해양사고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심판불필요처분을 받은 해양사고에 대하여 원인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심판원에 그 처분이 올바른지에 대하여 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관할 지방심판원은 제1항에 따라 심판이 신청된 경우 그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조사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시작하여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그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 <개정 2009. 12. 29.>

제40조(심판의 시작) 지방심판원은 조사관의 심판청구에 따라 심판을 시작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41조(심판의 공개) 심판의 대심(對審)과 재결은 공개된 심판정에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41조의2(원격영상심판) ① 심판원장은 제41조에도 불구하고 해양사고관련자가 교통의 불편 등으로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격영상심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원격영상심판은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정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심판으로 본다. <신설 2018. 12. 31.>

③ 제1항에 따른 원격영상심판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31.>

[전문개정 2009. 12. 29.]

제41조의3(약식심판 절차) ①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약식심판이 청구된 사건에 대하여는 심판의 개정(開廷)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판한다. 다만, 재결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 절차를 따른다.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약식심판을 할 경우에는 해양사고관련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심판원은 제1항에 따라 약식심판으로 심판을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의 개정절차에 따라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6. 15.]

제42조(심판장의 권한) ① 심판장은 개정(開廷) 중 심판을 지휘하고 심판정의 질서를 유지한다.

② 심판장은 심판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퇴정(退廷)을 명하거나 그 밖에 심판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43조(심판기일의 지정 및 변경) ① 심판장은 심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심판기일에는 해양사고관련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장은 1회 이상 출석한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는 소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심판장은 조사관, 심판변론인, 제44조의2에 따라 심판참여의 허가를 받은 이해관계인 및 소환하지 아니하는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심판기일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6. 15.>

④ 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해양사고관련자, 조사관 및 심판변론인의 신청을 받아 제1회 심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43조의2(집중심리) ① 심판원은 심리에 2일 이상이 걸릴 때에는 가능하면 매일 계속 개정하여 집중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전 심판기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심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44조(소환과 신문) 지방심판원은 심판기일에 해양사고관련자, 증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소환하고 신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44조의2(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 ① 이해관계인은 심판장의 허가를 받고 심판에 참여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판참여의 허가를 받은 이해관계인이 제44조에 따른 심판원의 소환과 신문에 연속하여 2회 이상 불응하거나 심판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심판장은 직권으로 해당 이해관계인에 대한 심판참여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심판참여를 허가하거나 제2항에 따라 심판참여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조사관과 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6. 15.]

제44조의3(심판정에서의 속기, 녹음·영상녹화) ① 심판장은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심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속기, 녹음·영상녹화는 심판조서의 일부로 삼는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44조의4(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복사) ① 해양사고관련자, 이해관계인 또는 심판변론인은 지방심판원에 심판조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심판원은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신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한 사람이 심판조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읽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읽어 줄 것을 지방심판원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지방심판원은 해양사고관련자, 증인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 등에 앞서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복사 등의 신청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45조(필요적 구술변론) ① 심판의 재결은 구술변론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술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재결을 할 수 있다.

1. 해양사고관련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장의 허가를 받고 서면으로 진술한 경우
3. 조사관이 사고 조사를 충분히 실시하여 해양사고관련자의 구술변론이 불필요한 경우 등 심판장이 원인규명을 위한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41조의3에 따른 약식심판을 행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사고관련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6. 15.]

제46조(인정신문) 심판장은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신문하고 해양사고관련자가 해기사 및 도선사인 경우에는 면허의 종류 등을 신문하여 해양사고관련자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47조(조사관의 최초 진술) 조사관은 심판청구서에 따라 심판청구의 요지를 진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48조(증거조사) ① 지방심판원은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심판원은 제1회 심판기일 전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른 조사만을 할 수 있다.

1. 선박이나 그 밖의 장소를 검사하는 일
2.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일
3. 관공서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일

③ 지방심판원은 구속·압수·수색이나 그 밖에 신체·물건 또는 장소에 대한 강제처분을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48조의2(증거자료의 한글사용) 심판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항해일지 등의 문서는 한글(국한문 혼용을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49조(선서) 지방심판원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할 때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에게 증언·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제49조의2(심판청구서의 변경 등)** ① 조사관은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사건명을 변경하거나 해양 사고 사실 또는 해양사고관련자를 추가·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② 심판장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관에게 해양사고관련자를 추가·철회 또는 변경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 ③ 심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양사고 사실 또는 해양사고관련자가 추가·철회 또는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양사고관련자, 심판변론인 및 제44조의2에 따라 심판참여의 허가를 받은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1. 6. 15.>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서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의 요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49조의3(심판청구의 취하) 조사관은 심판청구된 사건에 대한 심판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심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의2에 따라 심판원의 결정으로 조사관이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50조(증거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심판기일에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51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심판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52조(심판청구기각의 재결) 지방심판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결로써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1. 사건에 대하여 심판권이 없는 경우
2. 심판의 청구가 법령을 위반하여 제기된 경우
3. 제7조에 따라 심판할 수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09. 12. 29.]

제53조(재결이유의 표시) 재결에는 주문(主文)을 표시하고 이유를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54조(본안의 재결) 본안의 재결에는 해양사고의 구체적 사실과 원인을 명백히 하고 증거를 들어 그 사실을 인정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다만, 그 사실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뜻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55조(재결의 고지) 재결은 심판정에서 재결원본에 따라 심판장이 고지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56조(재결서의 송달) 심판원장은 제55조에 따라 재결을 고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결서의 정본을 조사관과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56조의2(송달의 방식) 해양사고관련자, 심판변론인 또는 대리인에 대한 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2. 18.>

[전문개정 2009. 12. 29.]

제57조(법령에의 위임)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6장 중앙심판원의 심판 <개정 2009. 12. 29.>

제58조(제2심의 청구) ① 조사관 또는 해양사고관련자는 지방심판원의 재결(특별심판부의 재결을 포함한다)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심판원에 제2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심판변론인은 해양사고관련자를 위하여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해양사고관련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심 청구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원심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59조(제2심의 청구기간) ① 제58조의 청구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2심 청구를 할 수 있는 자가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원심심판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60조(제2심 청구의 효력) 제2심 청구의 효력은 그 사건과 당사자 모두에게 미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61조(제2심 청구의 취하) 제2심 청구를 한 자는 재결이 있을 때까지 그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62조(법령위반으로 인한 청구의 기각) 중앙심판원은 제2심의 심판청구의 절차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재결로써 그 청구를 기각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63조(사건의 환송) 중앙심판원은 지방심판원이 법령을 위반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재결로써 사건을 지방심판원에 환송(還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64조(지방심판원의 청구기각 사유로 인한 청구의 기각) 중앙심판원은 지방심판원이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결로써 기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65조(본안의 재결) 중앙심판원은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경우 외에는 본안에 관하여 재결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65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 해양사고관련자인 해기사나 도선사가 제2심을 청구한 사건과 해양사고관련자인 해기사나 도선사를 위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1심에서 재결한 징계보다 무거운 징계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66조(준용규정) 중앙심판원은 심판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제5장을 준용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해양사고관련자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 부분만 해당한다)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6. 15.>

[전문개정 2009. 12. 29.]

제7장 이의신청 <개정 2009. 12. 29.>

제67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지방심판원에서 결정을 받은 자는 중앙심판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제2심 재결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68조(이의신청의 절차) ① 이의신청을 하려면 신청서를 지방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심판원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원심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

③ 지방심판원은 이의신청이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신청서를 수리(受理)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중앙심판원에 보내야 한다.

④ 이의신청은 원심결정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심판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관의 의견을 들어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69조(이의신청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 ①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 지방심판원은 필요하면 원심조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중앙심판원에 보내야 한다.

② 중앙심판원은 지방심판원에 대하여 원심조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보내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70조(원심결정의 집행정지) 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중앙심판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조사관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써 원심결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중앙심판원은 그 결정서의 정본을 지방심판원에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71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 중앙심판원은 조사관의 의견을 들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이 절차를 위반하였을 때 또는 그 이유가 없을 때에는 이의신청의 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정에는 반드시 그 이유를 붙일 필요는 없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72조(지방심판원에 대한 결정의 통지) 이의신청에 대한 중앙심판원의 결정은 이의신청인과 지방심판원에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73조(위임규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8장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 <개정 2009. 12. 29.>

제74조(관할과 제소기간 및 그 제한) ①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은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전속(專屬)한다. <개정 2014. 5. 21.>

② 제1항의 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④ 지방심판원의 재결에 대하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75조(피고) 제74조제1항의 소송에서는 중앙심판원장을 피고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76조 삭제 <1999. 2. 5.>

제77조(재판) ① 법원은 제74조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판결로써 재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1.>

② 중앙심판원은 제1항에 따라 재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심리를 하여 재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서 재결취소의 이유가 되는 판단은 그 사건에 대하여 중앙심판원을 기속(羈束)한다.

④ 이 법에 따른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9장 재결 등의 집행 <개정 2009. 12. 29.>

제78조(재결의 집행시기) 재결은 확정된 후에 집행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79조(재결의 집행자) 중앙심판원의 재결은 중앙수석조사관이, 지방심판원의 재결은 해당 지방수석조사관이 각각 집행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80조(면허취소 재결의 집행) 면허취소 재결이 확정되면 조사관은 해기사면허증 또는 도선사면허증을 회수하여 관계 해양수산관서에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81조(업무정지 재결의 집행) 조사관은 업무정지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기사면허증 또는 도선사면허증을 회수하여 보관하였다가 업무정지 기간이 끝난 후에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제6조의2에 따라 집행유예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회수하지 아니 한다.

[전문개정 2011. 6. 15.]

제81조의2(징계의 실효) 제5조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견책의 징계를 받은 해기사나 도선사가 그 징계 재결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 이상 무사고 운항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계는 실효(失効)된다. 이 경우 그 징계기록의 말소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2. 29.]

제82조(면허증의 무효선언과 고시)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 재결을 받은 사람이 조사관에게 그 해기사면허증 또는 도선사면허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중앙수석조사관은 그 면허증의 무효를 선언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2. 29.]

제83조(재결의 공고) 중앙수석조사관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시정·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보를 대신하여 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2. 29.]

제84조(재결 등의 이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취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수석조사관이 요구하면 그 조치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하는 재결을 받은 자
2. 제5조의2에 따라 시정 또는 개선조치의 요청을 받은 자

② 수석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내용을 검토하여 그 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10장 보칙 <개정 2009. 12. 29.>

제85조(증인 등의 수당지급) 이 법에 따라 출석하는 증인, 감정인, 통역인 및 번역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일당·숙박료, 감정료, 통역료 또는 번역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85조의2(불이익한 처우 등의 금지) 누구든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증언·감정·진술을 하거나 자료·물건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처우와 관련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4. 3. 24.]

제86조(비상임심판관 등의 수당) 심판에 참여하는 비상임심판관과 제30조에 따라 선정된 국선심판변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6. 15.]

제87조(행정심판 등의 제한) 이 법에 따른 재결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행정심판의 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88조(수수료) 각급 심판원으로부터 이 법에 따른 재결서·결정서 등의 등본을 발급받거나 심판조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복사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31.>

[전문개정 2009. 12. 29.]

제8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4조제2항에 따라 심판에 참여하는 비상임심판관
2. 제18조의3에 따라 특별조사부에서 조사를 담당하는 해양사고 관련 전문가

[본조신설 2011. 6. 15.]

제88조의3(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중앙심판원장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과 관련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는 정보를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 업무의 수행 외의 목적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해양사고관련자, 증인 등의 개인정보 등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중앙심판원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이나 그에 따른 예방조치의 집행 등 공익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는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관계 행정기관 및 제4조제3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 9. 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9. 14.>

[본조신설 2018. 12. 31.]

제11장 벌칙 <개정 2009. 12. 29.>

제89조(벌칙)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90조(과태료) ① 제85조의2를 위반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과 관련하여 증언·감정·진술을 하거나 자료·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증언·감정·진술이나 자료·물건의 제출을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처우와 관련한 불이익을 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4. 3. 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3. 24., 2018. 12. 31.>

1. 제5조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하는 재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5조제3항을 위반한 자
- 2의2.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3.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관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처분에 따르는 것을 방해한 자.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제3호의 경우 해양사고의 원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4.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심판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심판원의 제출명령을 받은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한 자
6. 제49조에 따른 선서를 위배하여 거짓 사실을 진술한 사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4. 3. 24., 2018. 12. 31.>
 1. 심판원으로부터 계속 2회의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해양사고관련자
 2. 심판원으로부터 계속 2회의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
 3. 제42조제2항에 따른 심판장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판원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14. 3. 24.>
 [전문개정 2009. 12. 29.]

제91조 삭제 <2009. 12. 29.>

부칙 <제2306호, 1971. 1. 22.>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해난심판위원회에 종사하는 해난심판위원장·위원은 이 법에 의한 해난심판위원장과 심판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82호, 1973. 3. 5.>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정년을 초과하였거나 임기가 만료된 심판위원장과 심판관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에 그 임기는 후임자가 임명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876호, 1975.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15호, 1983. 12. 31.> (선박직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해난심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9조제2항제1호중 “갑종선장 또는 갑종기관장”을 “1급항해사 또는 1급기관사”로 한다.
2. 제46조、제80조 및 제82조중 “해기사면허장”을 “해기사면허증”으로 한다.
3. 제81조 및 제82조의 제목 및 본문중 “면허장”을 “면허증 또는 면허장”으로 한다.

부칙 <제3951호, 1987. 11. 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중앙심판원장、심판관、주임조사관 및 조사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중앙심판원장、심판관、주임조사관 및 조사관은 이 법에 의한 중앙심판원장、심판관、수석조사관 및 조사관으로 각각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423호, 1991. 12. 14.> (비송사건절차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해난심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중 “제276조 내지 제278조”를 “제247조 내지 제249조”로 한다.

⑭생략

부칙 <제5153호, 1996. 8. 8.>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6>생략

<67>해난심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조제2항·제3항, 제9조의2 본문, 제13조의2, 제82조 및 제83조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6호중 “교통행정”을 “해양수산행정”으로 한다.

제20조의2 및 제81조의2중 “교통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제1항, 제37조제2항 및 제80조중 “해운관서”를 각각 “해양수산물관서”로 한다.

<68>및 <6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5809호,1999. 2.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및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1년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앙심판원장·지방심판원장·심판관 및 조사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 중인 중앙심판원장·지방심판원장·심판관 및 조사관중 이 법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제9조·제9조의2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중앙심판원장·지방심판원장 및 심판관 : 잔여임기에 해당하는 기간
2. 조사관 :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의 기간

제3조 (참심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위촉되어 있는 참심원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비상임심판관으로 본다.

제4조 (해사보좌인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중앙심판원에 등록된 해사보좌인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중앙심판원에 등록된 심판변론인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중앙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은 해사보좌인협회는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심판변론인협회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항질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제11조제1항 단서, 제12조제1항제1호중 “해난을”을 각각 “해양사고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중 “해난”을 각각 “해양사고”로 한다.

②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해난구조”를 “해양사고 구조”로, “해난구조체제”를 “해양사고 구조 체제”로 한다.

③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 다목중 “해난심판원”을 “해양안전심판원”으로 한다.

④도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중 “해난사고”를 “해양사고”로 하고, 동조제4항중 “해난사고가 해난심판법에 의한 해난심판에”를 “해양사고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에 의한 해양안전심판에”로 한다.

⑤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제목중 “해난구조지”를 “해양사고 구조지”로 하고, 동조 본문중 “해난구조”를 “해양사고 구조”로 한다.

⑥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단서 및 제12조 단서중 “해난사고”를 각각 “해양사고”로 한다.

⑦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8조제2호중 “해난구조”를 “해양사고 구조”로 하고, 동조제4호중 “해난을”을 “해양사고를”로 한다.

제752조의2의 제목 및 동조제1항중 “해난구조자”를 각각 “해양사고구조자”로 한다.

제774조제1항 본문중 “해난구조료”를 “해양사고 구조료”로 한다.

제794조제2항·제797조 및 제800조제1항중 “해난구조”를 각각 “해양사고 구조”로 한다.

제7장의 제목 “해난구조”를 “해양사고 구조”로 한다.

제849조의 제목중 “해난구조”를 “해양사고 구조”로 한다.

제851조중 “해난당시”를 “해양사고당시”로 한다.

제857조제2호중 “해난을”을 “해양사고를”로 한다.

제862조제3호중 “해난구조”를 “해양사고 구조”로 한다.

⑧선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단서중 “해난”을 “해양사고”로 한다.

⑨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중 “해난이”를 “해양사고가”로 한다.

제93조중 “해난사고”를 “해양사고”로 한다.

⑩선박직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중 “해난사고에 대하여 해난심판원이”를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로 한다.

제27조제3호 및 제28조제2호중 “해난심판법”을 각각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로 한다.

⑪섬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 제목 “(해난구조)”를 “(해양사고 구조)”로 하고, 동조 본문중 “해난구조”를 “해양사고 구조”로 한다.

⑫정부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중 “해난심판”을 “해양안전심판”으로 한다.

⑬한국해운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해양사고 구제사업

⑭해상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중 “해난이”를 각각 “해양사고가”로 하고, 동조제1항·제3항중 “해난”을 각각 “해양사고”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중 “해난”을 “해양사고”로 한다.

제17조제7항 단서 및 제18조제8항 단서중 “해난을”을 각각 “해양사고를”로 한다.

제45조제1항 본문중 “대형해난이”를 “대형 해양사고가”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 본문중 “해난으로”를 “해양사고로”로 한다.

제50조중 “해난이”를 “해양사고가”로 한다.

⑮해양과학조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해난사고”를 “해양사고”로 한다.

1^ 해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중 “해난사고”를 “해양사고”로 하고, 동항제4호중 “해난을”을 “해양사고를”로 한다.

1& 행정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8호중 “해난심판”을 “해양안전심판”으로 한다.

부칙 <제7427호, 2005. 3. 31.> (민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2\$ 생략

2%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친족·호주·가족관계”를 “친족관계”로 한다.

제27조제2항중 “직계친족·형제자매와 호주”를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로 한다.

2^ 내지2(생략

부칙 <제7428호,2005. 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38> 생략

<139>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중 “ 파산자 ” 를 “ 파산선고를 받은 자 ” 로 한다.

<140> 내지 <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796호,2005. 12. 29.> (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5> 생략

<66>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2호중 “ 4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 을 “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 3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 을 “ 3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하며, 동조제3항제2호중 “ 5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 을 “ 5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67> 내지 <68> 생략

부칙 <제7849호,2006. 2. 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3^ 생략

3&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 경찰공무원 ” 을 “ 국가경찰공무원 ” 으로 한다.

3* 내지4& 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제8792호,2007. 12. 21.>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심판관 및 조사관의 임명 및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1항·제3항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심판관 및 조사관부터 적용한다.
- ③(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거나 등록하는 심판원장, 심판관 또는 심판변론인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852호,2008. 2. 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 、 <생략> 、 、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87> 까지 생략

<688>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4조제3항, 제20조의2, 제28조제1항제3호, 제41조의2제2항, 제81조의2 후단 및 제88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제9조의2제1항, 제13조의2,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3항, 제30조의2제1항, 제82조 및 제83조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89>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9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854호,2009. 12.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02호,2011. 6.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행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결을 고지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심판이 청구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3>까지 생략

<66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2·제4호, 제4조제3항, 제18조의3제8항, 제20조의2, 제28조제1항제3호, 제30조제4항, 제31조의2제1항, 제41조의2제2항, 제44조의2제4항, 제81조의2 후단 및 제88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9조제2항·제3항, 제9조의2제1항, 제13조의2, 제18조의3제3항, 제30조의2제1항, 제82조 및 제83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6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547호, 2014.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해자료기록장치 정보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해양사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심판원장 및 심판관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심판원장 또는 심판관으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 중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은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의 임용기간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증거보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해양사고에 대해서는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660호, 2014. 5.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64호,2018. 12. 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59호,2020. 2.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89호,2020. 12. 2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 국가경찰공무원 ” 을 “ 경찰공무원 ” 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제19573호,2023. 7. 25.> (해상교통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3. 9. 14.>

제35조제3항제2호 중 “ 「해사안전법」 ” 을 “ 「해상교통안전법」 ” 으로, “ 제51조 ” 를 “ 제53조 ” 로 한다.

1& 및 1*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9725호,2023. 9.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는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심판원의 심판관을 지방심판원장으로 임명하는 경우 지방심판원장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이 법 시행 이후에 지방

심판원장으로 임명하는 경우 지방심판원장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9조제3항에 따른다.

제3조(심판변론인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의2제3항제3호에 해당하여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심판변론인은 제9조의2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판변론인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9573호 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0조제1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2호 중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제51조”를 “제53조”로 한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3호, 2026. 6. 23.,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044 - 200 - 6221, 62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1조의2(선박의 범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다른 선박과 관련 없이 단독으로 해양사고를 일으킨 군용 선박 및 경찰용선박, 그 상호간에 해양사고를 일으킨 군용 선박 및 경찰용선박,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기구는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2. 31.>

1. 동력선(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을 말하며, 선체의 외부에 추진기관을 붙이거나 분리할 수 있는 선박을 포함한다)
2. 무동력선(범선과 부선을 포함한다)
3.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4. 수상에서 이동할 수 있는 항공기

[전문개정 2012. 10. 29.]

제2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① 삭제 <2014. 9. 18.>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이라 한다)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과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사건의 관할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목개정 2014. 9. 18.]

제3조(관할 이전의 신청)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할 이전을 신청하려는 조사관 또는 해양사고관련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 또는 관할 지방심판원에 관할 이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18.>

② 제1항에 따른 관할 이전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지 못한다.

1. 심판정(審判廷)에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이미 진술한 경우
2.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심판불필요처분(審判不必要處分)이 올바른지에 대한 심판이 신청된 경우

[전문개정 2012. 10. 29.]

- 제4조(관할 이전 신청에 대한 처리)** ① 중앙심판원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 이전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심판원에 보내야 한다.
- ② 제1항과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 이전 신청서를 받은 지방심판원은 지체 없이 의견을 붙여 중앙심판원에 보내야 한다.
- ③ 지방심판원은 제2항에 따라 관할 이전 신청서를 중앙심판원에 보낸 후에는 중앙심판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의 절차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조사관 및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9.]

- 제5조(중앙심판원의 결정)** ① 중앙심판원은 관할 이전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할 지방심판원을 지정하여 관할 이전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② 중앙심판원은 제1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기간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9.]

- 제6조(결정서 송달과 통지)** ① 중앙심판원은 제5조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결정서의正本(正本)을 원(原) 관할 지방심판원을 거쳐 그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② 중앙심판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관할 이전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 그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에 알려야 한다.
- ③ 원 관할 지방심판원은 제5조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이전의 신청을 한 자 외의 조사관 및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9.]

- 제7조(서류 및 증거물의 발송)**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관할 이전 결정이 있을 때에는 원 관할 지방심판원은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지체 없이 새로 그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보내야 한다.
- ②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5일 이내에 소속 지방심판원의 심판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9.]

- 제7조의2(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대한 징계 결정의 기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이하 “심판원”이라 한다)이 정하는 해기사(海技士) 또는 도선사(導船士)에 대한 징계는 그 해양사고에서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 해양사고로 인한 피해의 경중(輕重), 해양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9.]

- 제7조의3(직무교육의 위탁 교육기관)**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 9. 7.>

1.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본조신설 2011. 12. 8.]

[종전 제7조의3은 제7조의4로 이동 <2011. 12. 8.>]

제7조의4(교육기관) 법 제9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
2.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전문개정 2012. 10. 29.]

제2장 비상임심판관 <개정 1999. 8. 23.>

제8조(정원) 각급 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9조(위촉) ① 각급 심판원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비상임심판관을 위촉할 때에는 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삭제 <2019. 6. 25.>

[전문개정 2012. 10. 29.]

제10조(비상임심판관의 자격) 비상임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선박의 운항 또는 선박용 기관의 운전
2. 어로(漁撈) 기술
3. 조선(造船)·조기(造機)·의장(艤裝)
4. 해사(海事)의 검정 또는 항만 하역
5. 선박의 구조
6. 항만의 축조
7. 기상(氣象)·해상(海象)
8. 선박통신
9. 해사 관련 법령
10. 선박 운영
11. 전자기기
12. 수로도서지(水路圖書誌) 또는 항로표지
13. 화물의 특성 또는 적재
14. 해양오염 방지

15. 그 밖에 해당 사건과 관련된 특수한 분야

[전문개정 2012. 10. 29.]

제11조(비상임심판관의 결원 등에 대한 조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이하 “중앙심판원장”이라 한다)은 각급 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에 결원이 생겼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비상임심판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9. 7.>

[전문개정 2012. 10. 29.]

제3장 제척·기피·회피

제12조(제척 결정) 심판원은 심판관이나 비상임심판관에게 제척(除斥)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 결정을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13조(기피신청의 절차) 기피신청은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서면으로 해당 심판관 또는 비상임심판관이 소속된 심판원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14조(의견서) 기피신청을 당한 심판관 또는 비상임심판관은 그 신청에 대하여 의견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15조(기피신청에 대한 결정) ① 심판원은 제13조에 따른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심판관 또는 비상임심판관에 대한 제척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기피신청을 당한 심판관 또는 비상임심판관이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할 때에는 제척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② 심판원은 기피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기피신청을 당한 심판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16조(회피신청) 회피신청은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서면으로 심판관이나 비상임심판관이 소속된 심판원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17조(심판절차의 정지) 제척·기피·회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심판원은 특히 긴급한 경우 외에는 심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3장의2 조사관 <신설 1988. 4. 20., 1999. 8. 23.>

제17조의2(지방심판원 조사관의 자격) 법 제1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1급 항해사, 1급 기관사 또는 1급 운항사의 해기사면허를 가진 사람
2. 2급 항해사, 2급 기관사 또는 2급 운항사의 해기사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경력 연수(年數)를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 가. 7급 이상의 해양수산업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나. 「선박안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선박검사원으로 근무한 경력
 - 다. 제7조의4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수산 또는 해양계열 고등학교만 해당한다)에서 선박의 운항 또는 선박용 기관의 운전에 관한 학과를 교수한 경력

[전문개정 2012. 10. 29.]

제17조의3(조사관의 사무)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1. 해양사고 통계의 종합·분석
2. 해양사고 사건의 현장검증
3. 해양사고에 대한 국제공조
4. 해양사고 범규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 10. 29.]

제17조의4(공개제한 정보의 범위) 법 제18조의3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조사대상자의 진술
2. 선박운항과 관련된 통신기록(음성 및 번역물 등을 포함한다)
3.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정보(의학적인 정보를 포함한다)
4. 항해자료기록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선박운항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정보
5. 조사과정에서 제출된 도면 및 선박검사증서

[본조신설 2011. 12. 8.]

제17조의5(공개제한 정보의 예외적 공개) 법 제18조의3제7항에 따라 제17조의4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공개제한 정보가 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의 원인규명에 필수적일 것
2.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에 포함하여 공개할 것

[본조신설 2011. 12. 8.]

제4장 심판변론인 <개정 1999. 8. 23.>**제18조 삭제** <1999. 8. 23.>**제19조 삭제** <1999. 8. 23.>**제20조 삭제** <2019. 6. 25.>**제20조의2 삭제** <1999. 8. 23.>**제21조 삭제** <2019. 6. 25.>

제22조(특별심판변론인의 신청) 법 제2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심판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심판원은 이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23조(심판변론인의 선임시기) 해양사고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은 심판정에서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24조(심급과 심판변론인의 선임) 해양사고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은 법 제27조에 따라 심판변론인을 선임하려면 심급마다 선임하여야 하며, 심판변론인과 연명으로 날인한 서면을 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25조(심판변론인의 등록)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심판변론인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상반신 사진

② 중앙심판원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판변론인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판변론인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 6. 25.]

제26조(심판변론인의 등록의 취소) ① 중앙심판원장은 법 제29조의2제3호의 사유로 심판변론인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중앙심판원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② 중앙심판원장은 법 제29조의2에 따라 심판변론인의 등록을 취소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등록이 취소되는 사람(같은 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9. 6. 25.]

제26조의2(협회설립 허가의 신청등)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심판변론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심판변론인은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와 정관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사무소의 소재지

2.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소

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심판변론인의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

9. 지회(支會)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 10. 29.]

제26조의3(협회의 사업) 법 제30조의3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해양안전심판 상담

2. 해양사고의 조사·연구

3. 해양안전심판 관계 법령의 연구

4. 해양안전심판 정보의 수집·정비

5. 심판변론인의 연수교육

6. 중앙심판원장이 위탁하는 교육

[전문개정 2012. 10. 29.]

제26조의4 삭제 <1999. 8. 23.>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절차

제27조(조사관의 질문조서·검사조서 등의 작성) ① 조사관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해양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선박이나 그 밖의 장소를 검사하였을 때에는 질문조서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조서 내용을 질문받은 사람 또는 선박이나 그 밖

의 장소의 관리인에게 읽어 들려 준 후 이들과 함께 해당 조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이 서명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관은 그 사유를 덧붙여 적고 조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은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증언·감정 또는 번역을 시켰을 때에는 증언서·감정서 또는 번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28조 삭제 <1999. 8. 23.>

제29조(심판청구서)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 9. 18.>

1. 사건명
2.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3. 해양사고관련자의 당시 직명(職名)
4. 가지고 있는 면허의 종류
5. 해양사고의 개요

[전문개정 2012. 10. 29.]

제30조(단독심판의 청구) 조사관은 사건이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단독심판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그 뜻을 적어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31조(비상임심판관의 참여) 조사관은 사건의 심판에 비상임심판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그 뜻을 적어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31조의2(약식심판의 청구 사건) 법 제3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오염물질”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오염물질로서 해당 별표에서 정한 최저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1. 12. 8.]

제32조(심판청구의 통지) 조사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를 지정하여 지방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9. 18., 2021. 9. 7.>

1. 심판청구를 한 심판원의 명칭
2. 사건명 및 사실의 개요
3.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당시의 직명·직업과 가지고 있는 면허의 종류
4. 심판청구를 한 날짜

5. 조사관의 성명

[전문개정 2012. 10. 29.]

[제목개정 2021. 9. 7.]

제32조의2(이해관계인의 심판신청) ① 이해관계인이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판불필요처분사건 심판신청서를 관할 지방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심판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그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은 5일 이내에 그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32조의3(심판청구서의 변경 등) ① 조사관은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에 적힌 사건명을 변경하거나 해양사고 사실 또는 해양사고관련자를 추가·철회 또는 변경하려면 그 내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을 관할 지방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조사관에게 해양사고관련자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알리고, 그 서면을 받은 조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32조의4(심판청구의 취하) ① 법 제49조의3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심판청구 후 사건에 대하여 심판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2. 심판청구 후 사건에 대하여 심판청구가 법령을 위반하여 제기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3. 심판청구 후 사건에 대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심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법 제49조의3 본문에 따른 심판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정에서는 말로 취하할 수 있다.

③ 지방심판원은 조사관이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33조(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직업 등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제29조 및 제32조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생년월일·직명, 가지고 있는 면허의 종류 또는 직업을 적어야 할 경우에 이들 사항이 명백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9. 18.>

[전문개정 2012. 10. 29.]

제34조 삭제 <1999. 8. 23.>

제35조(단독심판의 범위)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말한다. 다만, 여객선에 관한 사건은 제외한다.

1. 해양사고의 원인이 단순하고 분명한 사건
2. 선박이나 그 밖의 시설의 손상이 중대하지 아니한 사건

[전문개정 2012. 10. 29.]

제36조(심판부 구성의 변경)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1명의 심판관이 심판하는 경우라도 심판관은 해당 사건이 1명의 심판관으로 심판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합의체에서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37조(심판기일의 지정) 심판청구가 있을 때에는 심판장은 심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38조(심판기일의 변경신청) ①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심판기일의 변경신청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로 심판기일을 정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서를 송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39조(심판장의 심판기일 변경) 심판장은 직권으로 심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39조의2(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복사) ① 법 제44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심판조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이하 “심판조서등”이라 한다)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열람 또는 복사 신청서를 지방심판원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심판원은 법 제44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심판조서등의 열람·복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일시, 장소, 대상 및 방법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조서등을 열람·복사하는 자는 그 지정내용에 따라 심판조서등을 열람 또는 복사해야 한다.

③ 심판조서등을 복사하는 자는 필사하거나 자신의 장비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 다만, 지방심판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방심판원 안에 설치된 장비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

④ 심판변론인은 지방심판원의 허가를 받아 자기의 사용인이나 사무원 등으로 하여금 심판조서등을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심판원은 법 제44조의4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비실명(非實名)으로 표시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처리(이하 “비실명 처리”라 한다)해야 한다.

⑥ 지방심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조서등을 열람·복사하는 자에게 심판조서등의 열람·복사의 중지, 제한을 명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

정 2021. 1. 5.>

1. 심판조서등을 열람·복사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지정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심판조서등을 열람·복사하는 자가 심판조서등에 고쳐 쓰는 등 변경을 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심판조서등을 손상시킨 경우
 3. 심판조서등을 열람·복사하는 자가 심판조서등의 비실명 처리를 훼손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고 한 경우
 4. 그 밖에 심판조서등이 멸실, 손상 또는 변질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본조신설 2019. 6. 25.]

제40조(제1회 심판기일 전 검사에의 참관) 심판원은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검사를 하려면 미리 그 뜻을 조사관·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에게 알려 참관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12. 10. 29.]

[제목개정 2021. 1. 5.]

제41조(심판정) ① 심판기일에 하는 심판은 각급 심판원의 심판정에서 개정(開廷)한다. 다만, 합의체심판부는 중앙심판원장의 승인을, 단독심판관은 소속 심판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심판원의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개정할 수 있다.

② 심판정은 정수의 심판관·비상임심판관 및 서기가 참석하고 조사관이 출석하여 개정한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42조(증거조사) ① 심판기일에 하는 증거조사는 심판정에서 한다.

② 심판기일 외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43조(출석할 수 없을 때의 신고 등) ① 해양사고관련자는 심판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심판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심판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관의 의견을 들은 후 심판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44조(대리인의 심판정 출석) ① 해양사고관련자 중 해기사 및 도선사(면허를 가지고 해당 직무를 수행한 사람만 해당한다) 외의 사람은 심판정에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다. 다만, 심판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인의 심판정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은 위임장으로 그 자격을 증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45조(심판장의 신문 등) ① 심판관계인에 대한 신문(訊問)과 증거조사는 심판장이 한다.

② 배석심판관이나 조사관 및 심판변론인은 심판장에게 말한 후에 심판관계인을 신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46조(증인이 심판원 안에 있을 경우의 신문) 증인이 심판원 안에 있을 때에는 소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47조(선서의 방식) ① 선서는 선서문으로 한다.

② 선서문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라고 적어야 한다.

③ 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문을 낭독하지 못하거나 선서문에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서기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④ 선서는 일어서서 엄숙히 하여야 한다.

⑤ 심판장은 선서할 증인에게 선서 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48조(개별신문과 대질) ① 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심판정에 신문받지 아니하는 증인이 있을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해양사고관련자를 대질신문(對質訊問)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49조(선서의 예외규정) ① 해양사고관련자 중 해기사 및 도선사(면허를 가지고 해당 직무를 수행한 사람만 해당한다)의 배우자나 친족 또는 배우자나 친족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선서 없이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②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선서를 시키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50조(수명심판관의 증거조사) ① 심판원은 소속 심판관 중 1명에게 필요한 사항의 증거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명심판관(受命審判官)은 심판정에서 그 증거조사의 결과를 심판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명심판관이 하는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심판원의 심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51조(심판개정 후 장기간 개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심판절차 갱신 등) ① 심판원은 심판개정(審判開廷) 후 장기간 심판을 열지 아니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절차를 갱신(更新)할 수 있다.

② 심판원은 심판개정 후 해양사고관련자가 추가로 지정된 경우에는 심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52조(심판개정 후 심판관 등이 경질된 경우의 심판절차 갱신) 심판원은 심판개정 후 심판관이나 비상임심판관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심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재결(裁決)의 고지(告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53조(비상임심판관 참여의 결정) ① 심판원은 심판개정 후에 해당 사건의 심판에 비상임심판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관의 의견을 들어 비상임심판관의 참여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심판원은 심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54조(조사관과 해양사고관련자 등의 의견 진술) ① 증거의 조사가 끝났을 때에는 조사관은 사실을 제시하고 그 해양사고의 원인에 대한 판단,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징계 또는 시정, 개선의 권고나 명령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② 해양사고관련자와 심판변론인은 제1항에 따른 조사관의 진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55조(최후진술) 해양사고관련자와 심판변론인에게는 최후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56조(변론의 재개) 심판원은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57조(심판청구 기각의 재결) 심판원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심판원이 심판해서는 아니 될 사건에 대해서는 재결로써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58조(재결서) ① 재결서는 심판을 한 심판관이 작성하고 심판에 참여한 비상임심판관과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심판관이나 비상임심판관이 경질 등의 사유로 서명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심판관이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59조(재결서의 기재사항) 재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 9. 18.>

1. 심판원의 명칭
2. 사건명
3.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생년월일 및 주소
4. 심판청구 취지
5. 심판에 관여한 조사관의 성명
6. 재결 주문
7. 재결 이유
8. 재결 연월일

[전문개정 2012. 10. 29.]

제60조(재결의 고지) 재결의 고지는 재결서를 낭독하거나 그 요지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61조(재결서 등본의 청구) 해양사고관련자, 심판변론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재결서 등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62조(결정) 심판정에서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심판관계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심판관계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결정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63조(결정을 하기 위한 조사) ① 심판원은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심판원은 소속 심판관 중 1명에게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64조(결정의 고지) 결정의 고지를 심판정에서 하는 경우에는 결정서를 낭독하거나 그 요지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65조(준용규정)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정에 관하여는 재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6장 중앙심판원의 심판절차

제66조(제2심 청구서의 우편 발송) 조사관과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제2심 청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

였을 때에는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67조(서류 및 증거물의 송부 등) ① 제2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원심지방법심판원은 지체 없이 일건서류(一件書類) 및 증거물을 그 심판원의 조사관에게 보내고, 조사관은 그 일건서류 및 증거물을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중앙심판원의 조사관에게 보내야 한다.

② 중앙심판원의 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일건서류 및 증거물을 받은 날부터 5일 내에 중앙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원심지방법심판원은 지체 없이 청구인 외의 해양사고관련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68조(제2심 청구의 취하방식) ① 제2심 청구의 취하는 서면을 중앙심판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심판정에서는 말로 취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취하는 제2심 청구를 한 자 전원(全員)이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제2심 청구를 한 자 전원이 그 청구를 취하하였을 때에는 중앙심판원은 결정으로 제2심의 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69조(원심재결의 인용) 제2심의 재결에는 원심재결에 적은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70조(심판절차 규정의 준용)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판원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심판원의 심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71조(이의신청의 결정에 관한 준용규정) 법 제7장의 규정 외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는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7장 보칙

제72조 삭제 <2002. 2. 4.>

제72조의2(재결의 집행시기) 법 제78조에 따른 재결의 집행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심판원 재결의 경우: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제2심의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법 제62조에 따른 기각재결서 또는 제68조제3항에 따른 각하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
2. 중앙심판원 재결의 경우: 재결을 고지한 때

[전문개정 2012. 10. 29.]

제73조 삭제 <2019. 6. 25.>

제74조(조서와 관련한 관계인의 청구에 대한 조치) 심판정에서 한 심판관계인의 진술을 수록한 조서에 대하여 진술자가 청구할 때에는 심판장은 서기로 하여금 그 진술에 관한 부분을 읽어 들려주고 증감 또는 변경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서에 적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75조(통지 등을 받을 장소의 신고) ① 해양사고관련자, 심판변론인 또는 대리인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통지나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장소를 해당 심판원의 소재지에 정하고 이를 심판원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1. 9. 7.>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없을 때에는 해양사고관련자, 심판변론인 또는 대리인의 주소로 통지하거나 서류를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심급마다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목개정 2021. 9. 7.]

제76조(우편에 의한 서류의 송달) ① 법 제56조의2에 따라 서기는 해양사고관련자, 심판변론인 또는 대리인에 대한 통지나 서류의 송달을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9. 7.>

② 제1항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을 때에는 발송한 날부터 5일이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43조제2항·제3항, 제44조 및 제56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 10. 29.]

제77조(공시송달) ① 주소가 불분명한 자 또는 법 제43조제2항·제3항, 제44조 및 제56조에 따른 통지 등의 대상자로서 등기우편으로 통지나 서류의 송달을 받지 않는 자에게 통지나 서류의 송달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실는 것으로 통지나 서류의 송달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 9. 7.>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관보에 실린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통지나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9. 7.>

[전문개정 2012. 10. 29.]

제78조(기간의 계산) ① 일, 월 또는 연을 단위로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첫날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 단서의 경우와 업무정지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한다.

②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끝난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 단서의 경우와 업무정지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휴일에 끝난다.

③ 업무정지기간은 해당 면허증을 직접 제출하였을 때에는 제출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우편 등으로 제출하였을 때에는 발송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발송일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도

달일부터 기산하며, 재결 확정 이전에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재결 확정일부터 기산한다.

[전문개정 2012. 10. 29.]

- 제79조(증인 등의 비용 지급 등)** ① 법 제85조에 따라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게 지급할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에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른다.
- ② 제1항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4조, 제5조 및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증인, 감정인, 통역인 및 번역인에게 지급할 일당, 감정료, 통역료 또는 번역료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심판원장이 정한다.
- ④ 중앙심판원장 또는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이하 “지방심판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여비, 일당, 감정료, 통역료 또는 번역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1. 9. 7.>
1. 증인이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
 2.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거짓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거부하였을 때
 - ⑤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은 본인의 여비, 일당, 감정료, 통역료 또는 번역료를 해당 해양사고의 재결 확정 전에 청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0. 29.]

- 제79조의2(비상임심판관 등의 수당 지급 등)** ① 비상임심판관이 해양안전심판 및 현장검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해당 심판원 심판관의 봉급월액의 3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 ② 법 제30조에 따라 선정된 국선 심판변론인(이하 “국선 심판변론인”이라 한다)이 해양안전심판 및 현장검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심판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국선 심판변론인이 같은 해양안전심판에 2회 이상 참여하였을 때에는 초과하는 1회마다 본문에 따른 수당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 ③ 비상임심판관 및 국선 심판변론인이 해양안전심판에 참여하거나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한 현장검증 또는 그 밖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출장을 갈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과 별도로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의 여비에 준하는 금액을 그 여비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2. 10. 29.]

- 제79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앙심판원장 및 지방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에 따른 비상임심판관의 위촉, 해촉에 관한 사무

2. 법 제28조의2에 따른 심판변론인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21. 9. 7.]

제8장 벌칙 <신설 2021. 9. 7.>

제8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9. 18.>
[전문개정 2012. 10. 29.]

부칙 <제5686호, 1971. 6. 28.>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법시행일) 법 부칙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의 시행일을 이 영의 시행일로 한다.

부칙 <제8478호, 1977. 3. 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81호, 1978. 4. 27.>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부산지방법해난심판원에 계류중인 목호지방해운항만청관할에 속하는 해난사건은 동 심판원이 처리한다.

부칙 <제11022호, 1982. 12. 31.>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국외에서 발생한 해난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에서 발생한 해난사건으로서 각 지방해난심판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심판원이 심판한다.
- ③(합의체심판부에 계속중인 해난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각 지방해난심판원의 합의체심판부에 계속중인 사건은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 합의체심판부에서 심판한다.

부칙 <제11756호, 1985. 8.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계속중인 사건의 심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각 지방심판원에 계속중인 해난사건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 심판원에서 심판한다.

부칙 <제12434호, 1988. 4. 20.>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3항중 “주임조사관”을 각각 “수석조사관”으로 한다.

③(계속중인 사건의 심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지방심판원에 계속중인 해난사건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심판원에서 심판한다.

④(지방조사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은 이 영에 의한 조사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⑤(해사보좌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해사보좌인으로 등록된 자는 이 영에 의한 해사보좌인으로 본다.

부칙 <제14447호, 1994. 12. 23.>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제70조·[별표7]·[별표9] 및 [별표10]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1조 내지 제78조 및 [별표11]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항로관제요원의 사전교육 및 직무적응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표11]의 항공교통관제소공무원 정원중 78인(항공주사 50, 전무주사 5, 항공주사보 17, 전무주사보 4, 전무서기 2)은 1994년 9월 9일부터, 나머지 정원 70인(3급 1, 4급 1, 5급 5, 6급 21, 7급 21, 8급 14, 기능직 7인)은 1995년 1월 1일부터 각각 1995년 2월 28일까지 각각 건설교통부의 공무원 정원으로 본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58>생략

<159> 해난심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제2호다목, 제18조제3호, 제72조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20조제3항중 “교통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60>내지 <205>생략

부칙 <제15135호, 1996. 8. 8.>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5>생략

<116> 해난심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호다목 및 제72조 제목、본문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중 “교통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제15830호,1998. 7. 1.> (선박안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해난심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호나목중 “선박안전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관 또는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원을 ” 선박안전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원 또는 동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관"으로 한다.

부칙 <제15892호,1998. 9. 17.> (선원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해난심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중 “선원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선원교육기관”을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16541호,1999. 8.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항질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중 “해난”을 “해양사고”로 한다.

제5조제2호중 “해난구조”를 “해양사고구조”로 한다.

②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호중 “해난재해예방”을 “해양사고재해예방”으로 한다.

③도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제1호중 “해난심판법”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로 한다.

④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제2호 사목중 “해사보좌인업”을 “심판변론인업”으로 한다.

⑤선박직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5호중 “해난심판법”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로 한다.

⑥선원노동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호중 “해난심판원”을 “해양안전심판원”으로 한다.

⑦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중 “해난방지교육”을 “해양사고방지교육”으로 한다.

⑧증인등의비용지급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해난심판법”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로 한다.

제4조중 “해난사건”을 “해양사고사건”으로 한다.

⑨참심원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참심원수당등지급규정”을 “비상임심판관수당등지급규정”으로 한다.

제1조중 “해난심판법”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로, “해난심판”을 “해양안전심판”으로, “참심원”을 “비상임심판관”으로 한다.

제2조중 “참심원”을 “비상임심판관”으로, “해난심판”을 “해양안전심판”으로, “해난심판원”을 “해양안전심판원”으로 한다.

제3조중 “참심원”을 “비상임심판관”으로, “해난”을 “해양사고”로 한다.

⑩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중 “해난구조업무”를 “해양사고구조업무”로 하고, 동항제23호·제25호 및 제26호중 “해난사고”를 각각 “해양안전사고”로 한다.

⑪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해난사건”을 “해양사고사건”으로, “해난심판법”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로, “해난심판원”을 “해양안전심판원”으로 한다.

제3조중 “해난심판”을 “해양안전심판”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35호중 “해난”을 “해양사고”로 한다.

제19장의 제목 “해난심판원”을 “해양안전심판원”으로 한다.

제49조중 “해난심판원”을 “해양안전심판원”으로, “해난사건”을 “해양사고사건”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중 “중앙해난심판원”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지방해난심판원”을 “지방해양안전심판원”으로 한다.

제51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중 “해난사건”을 각각 “해양사고사건”으로 하고, 동항제4호 및 제6호중 “해난”을 각각 “해양사고”로 한다.

제53조중 “해난심판원”을 “해양안전심판원”으로 한다.

별표 3중 “해난심판원”을 각각 “해양안전심판원”으로 한다.

⑫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본문중 “중앙해난심판원장”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으로 한다.

⑬행정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해난심판”을 “해양안전심판”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해난심판”을 “해양안전심판”으로 한다.

부칙 <제17505호,2002. 2.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12호,2004. 3. 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63호,2006. 6. 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1(생략

2)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경찰용 선박”을 각각 “국가경찰용 선박”으로 한다.

2! 내지3@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300호,2007. 9. 28.>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호나목 중 “선박안전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선박안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20722호,2008. 2. 29.>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9> 까지 생략

<130>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0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131>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3357호,2011. 1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정보의 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특별조사부의 조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153호,2012. 10.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을 각각 폐지한다.

1. 「비상임심판관 및 국선 심판변론인 수당 등 지급 규정」
2. 「증인등의비용지급에관한규정」

부칙 <제24443호,2013. 3. 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8>까지 생략

<139>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40>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5618호,2014. 9.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9924호,2019. 6.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31349호,2020. 12. 31.>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4& 까지 생략

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경찰용선박”을 각각 “경찰용선박”으로 한다.

4(생략

부칙 <제31380호,2021. 1. 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973호,2021. 9.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50호,2024. 6. 4.>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4! 까지 생략

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관할구역란 제4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4# 및4\$ 생략

부칙 <제35089호,2024. 12. 2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3# 까지 생략

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관할구역란 제1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관할구역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전북특별자치도

부칙 <제36423호,2026. 6. 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77> 및 <78> 생략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6. 23.>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명칭·위치 및 관할(제2조제2항 관련)

| 명칭 | 위치 | 관할구역 및 사건의 관할 | |
|---------------------|-----------|--|--|
| | | 관할구역 |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사건의 관할 |
| 동해지방
해양안전
심판원 | 동해시 | 1.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의 해안
경계(북위 35도38분55초, 동
경 129도27분08초)로부터 진
방위(眞方位) 90도로 일본국
효고 현의 해안까지 그은 선
(이하 “가선”이라 한다) 이
북의 영해
2. 함경북도
3. 함경남도
4. 강원특별자치도
5. 경상북도(가선 이남의 구역은
제외한다) | 가. 가선 이북의 한반도 해안과
동경 150도의 자오선까지의
시베리아의 해안, 가선, 가선
이동(以東)의 일본국 혼슈의
서부와 북부 해안, 혼슈 동북
쪽 끝의 시리야사키(북위 41
도25분45초, 동경 141도28
분00초)로부터 진방위 90도
로 동경 150도의 자오선까지
그은 선(이하 “나선”이라
한다) 및 나선의 동쪽 끝으로
부터 자오선을 따라 북으로
시베리아 해안까지 그은 선을
연결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역
중 국외의 수역과 이에 접속
된 하천에서 발생한 사건
나. 동은 서경 120도, 서는 동
경 150도의 자오선 사이의
수역과 이에 접속된 하천에서
발생한 사건 |
| 부산지방
해양안전
심판원 | 부산
광역시 | 1. 북은 가선, 서는 섬진강 하구
의 강 중심(북위 34도58분18
초, 동경 127도45분57초)에서
경상남도 하동군 길전면 마도
북서쪽 끝(북위 34도56분15
초, 동경 127도46분41초), 같
은 면 소마도 서남쪽 끝(북위
34도55분54초, 동경 127도47
분00초), 같은 도 남해군 고현
면 외난조도 북쪽 끝(북위 34
도54분40초, 동경 127도49분 | 가. 가선으로부터 나선까지의 한
반도 해안, 가선, 가선 이남의
일본국 혼슈의 서부 및 남부
해안과 혼슈의 동부 해안, 나
선, 나선의 동쪽 끝으로부터
동경 150도의 자오선을 따라
남으로 북위 32도까지 그은
선, 나선, 나선과 라선 사이의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해안,
라선 및 라선의 남쪽 끝으로
부터 진방위 90도로 동경 |

| | | | |
|---------------------|----------------------|---|---|
| | | <p>05초), 같은 변 외난조도 남쪽 끝(북위 34도54분35초, 동경 127도49분08초), 같은 변 송도 남동쪽 끝(북위 34도52분53초, 동경 127도49분12초) 및 같은 군 서면 노구리 서북의 북위 34도52분17초, 동경 127도49분13초까지 그은 선(이하 “다선”이라 한다), 다선의 남쪽 끝으로부터 같은 변 남상리 남쪽의 서쪽 끝(북위 34도51분02초, 동경 127도48분36초)까지의 해안, 같은 변 남상리 남쪽의 서쪽 끝에서 북위 34도45분00초, 동경 127도50분00초, 북위 34도35분00초, 동경 128도00분00초를 지나 북위 32도00분00초, 동경 128도00분00초까지 그은 선(이하 “라선”이라 한다) 이내의 영해</p> <p>2. 부산광역시</p> <p>3. 울산광역시</p> <p>4. 경상남도(다선 및 라선 이동의 구역은 제외한다)</p> | <p>150도의 자오선까지 그은 선을 연결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역 중 국외의 수역과 이에 접속된 하천에서 발생한 사건</p> <p>나. 동은 동경 060도, 서는 서경 030도의 자오선 사이의 수역과 이에 접속된 하천에서 발생한 사건</p> |
| 목포지방
해양안전
심판원 |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목포시 | <p>1. 동은 다선, 다선과 라선 사이의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해안, 라선 및 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전북특별자치도의 해안 경계(북위 35도25분35초, 동경 126도27분00초)로부터 북위 35도25분42초, 동경 126도26분00초를 지나 진방위 270도로 중국의 해안까지 그은 선(이하 “마선”이라 한다) 이내의 영해</p> <p>2. 전남광주통합특별시(마선 이북의 지역은 제외한다)</p> <p>3. 제주특별자치도</p> | <p>가. 다선, 다선과 라선 사이의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해안, 라선, 다선과 마선 사이의 한반도 해안, 마선, 라선의 남쪽 끝으로부터 진방위 270도로 중국의 해안까지 그은 선(이하 “바선”이라 한다) 및 마선과 바선 사이의 중국 해안을 연결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역 중 국외의 수역과 이에 접속된 하천에서 발생한 사건</p> <p>나. 동은 서경 030도, 서는 서경 120도의 자오선 사이의 수역과 이에 접속된 하천에서</p> |

| | | | 발생한 사건 |
|---------------------|-----------|--|--|
| 인천지방
해양안전
심판원 | 인천
광역시 | 1. 마선 이북의 영해
2. 서울특별시
3. 인천광역시
4. 세종특별자치시
5. 경기도
6. 충청북도
7. 충청남도
8. 전북특별자치도
9. 황해도
10. 평안남도
11. 평안북도 | 가. 마선 이북의 한반도 해안과
중국의 해안 및 마선을 연결
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역 중
국외의 수역과 이에 접속된
하천에서 발생한 사건
나. 동은 동경 150도, 서는 동
경 060도의 자오선 사이의
수역과 이에 접속된 하천에서
발생한 사건(동해지방해양안
전심판원, 부산지방해양안전
심판원 및 목포지방해양안전
심판원에서 관할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 6. 2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심판원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채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하는 재결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0조제2항제1호 | 150만원 | 250만원 | 500만원 |
| 나.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90조제2항제2호 | 150만원 | 250만원 | 500만원 |
| 다. 법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90조제2항제2호의2 | 150만원 | 250만원 | 500만원 |
| 라. 법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관의 처분에 따르지 않거나 처 | 법 제90조제2항제3호 | 150만원 | 250만원 | 500만원 |

| | | | | |
|--|------------------|-------|-------|-------|
| 분에 따르는 것을 방해한 경우.
다만, 법 제37조제1항제1호·
제3호의 경우 해양사고의 원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마.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심판
장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0조제
3항제3호 | 60만원 | 120만원 | 200만원 |
| 바.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
른 심판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90조제
2항제4호 | 150만원 | 250만원 | 500만원 |
| 사. 법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
른 심판원의 제출명령을 받은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제
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
한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한 경우 | 법 제90조제
2항제5호 | 150만원 | 250만원 | 500만원 |
| 아. 법 제49조에 따른 선서를 위
배하여 거짓 사실을 진술한 경우 | 법 제90조제
2항제6호 | 150만원 | 250만원 | 500만원 |
| 자. 법 제85조의2를 위반하여 해
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과 관련
하여 증언·감정·진술을 하거
나 자료·물건을 제출한 사람
에게 그 증언·감정·진술이나
자료·물건의 제출을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처우와 관련한
불이익을 준 경우 | 법 제90조제
1항 | 300만원 | 500만원 | 1천만원 |
| 차.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으
로부터 계속 2회의 소환을 받
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
지 않은 경우 | 법 제90조제
3항제1호 | 60만원 | 120만원 | 200만원 |
| 카.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심판원으로부터 계속
2회의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
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0조제
3항제2호 | 60만원 | 120만원 | 200만원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1. 26.] [해양수산부령 제652호, 2024. 2. 5.,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044 - 200 - 6221, 62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해양사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1. 항해 중 운항 부주의로 다른 선박에 근접하여 충돌할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가까스로 피한 사태
2. 항로 내에서의 정박 중 다른 선박에 근접하여 충돌할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가까스로 피한 사태
3. 입·출항 중 항로를 이탈하거나 예정된 항로를 이탈하여 좌초될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가까스로 안전한 수역으로 피한 사태
4. 화물을 싣거나 묶고 고정시킨 상태가 불량한 사유 등으로 선체가 기울어져 뒤집히거나 침몰할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가까스로 피한 사태
5. 전기설비의 상태 불량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상황이었으나 가까스로 화재가 나지 아니하도록 조치한 사태
6. 해양오염설비의 조작 부주의 등으로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가까스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한 사태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태와 유사한 사태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태

제2조의2(원격영상심판장치) 법 제2조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치를 말한다.

1. 동영상 및 음성의 송수신 장치는 양쪽에 모두 갖추어져 서로 상대방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을 것
 2. 동영상 및 음성의 전송은 양쪽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것
 3. 전송되는 동영상 및 음성은 권한이 없는 자가 송수신할 수 없도록 보안장치를 갖춘 것
- [본조신설 2016. 7. 12.]

제3조(전문연구기관) 법 제4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2021. 12. 28.>

1.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4조(특별조사부의 구성 및 운영) 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의 수석조사관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특별조사부(이하 “특별조사부”라 한다)를 구성할 경우에는 그 구성원이 해당 해양사고의 심판청구를 위한 조사 업무 및 심판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겸임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해양사고 관련 전문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가
2. 해양사고 조사대상자에 대한 심리적·의학적 또는 그 밖의 잠재적 원인을 분석·연구하는 분야의 전문가
3. 해양사고 조사와 관련된 국제공조 분야의 전문가

③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특별조사부의 장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사고와 관련된 사실정보
2. 해양사고의 개요 및 경위
3. 해양사고의 원인에 대한 분석
4.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결과
5.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권고 및 건의사항

④ 특별조사부의 조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에 따른다.

제5조(연수교육계획의 수립)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이하 “중앙심판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심판관, 조사관 및 그 밖의 직원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연수교육의 목표
2. 연수교육의 내용
3. 교육대상 및 교육기간
4. 그 밖에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6조(연수교육과정) ① 연수교육과정은 신규교육과정과 전문교육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신규교육과정은 해양안전심판 관련 업무를 처음으로 담당하는 사람이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③ 전문교육과정은 신규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 담당 직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7조(위탁교육 등) 중앙심판원장은 심판관, 조사관 및 그 밖의 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외에 파견하여 연수교육을 받게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과 협의하여 위탁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자료 등) 중앙심판원장은 연수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연수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관할 이전 신청서)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관할 이전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해사 관련 분야)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사 관련 분야”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말한다. <개정 2013. 3. 24.>

1. 해사공법
2. 해사사법
3. 해사국제법

제11조(심판변론인의 등록신청)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6. 25.>

② 법 제28조제2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천원의 등록수수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800원의 등록수수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제12조(등록증의 발급 등) ① 중앙심판원장은 제11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심판변론인 등록대장에 등록을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심판변론인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중앙심판원장은 심판변론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없거나 법 제28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심판변론인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심판변론인 등록부) ① 중앙심판원장은 심판변론인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심판변론인 등록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판변론인 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9. 18.>

1. 성명, 생년월일
2.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3. 심판변론인 자격의 취득 근거
4. 사무소의 소재지

5.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등록취소 연월일 및 그 사유

제14조(등록사항 변경신고) 심판변론인은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 6호서식의 심판변론인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중앙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대장의 기록 말소) 중앙심판원장은 법 제29조의2에 따라 심판변론인의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심판변론인 등록대장에 적힌 그 심판변론인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제16조(등록 등의 통지) 중앙심판원장은 심판변론인이 등록하거나 그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이를 관계기관 및 관계단체에 알려야 한다.

제17조(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 청구 등)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빈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는 해양사고관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6. 7. 1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2. 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사람인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인 경우

4. 그 밖에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이 국선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변론인 선정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청구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고려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해양사고관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2. 「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직원이 아닌 경우

[전문개정 2014. 9. 18.]

제18조(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 통보)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장은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선 심판변론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국선 심판변론인 및 해양사고관련자에게 그 선정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9. 18.>

제19조(준해양사고의 통보)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준해양사고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 8호서식의 준해양사고 통보서에 따르되, 인터넷 또는 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의2(조사관의 증표)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조사관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 7. 12.]

제20조(심판불필요처분사건 심판신청서) 영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심판불필요처분사건 심판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의2(원격영상심판의 절차 등) ① 해양사고관련자는 교통의 불편 등으로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적은 서면으로 심판원장에게 법 제41조의2에 따른 원격영상심판으로 진행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심판원장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격영상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원장은 서기로 하여금 원격영상심판을 하는 이유와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을 조서에 적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7. 12.]

제21조(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 법 제44조의2에 따라 심판에 참여하려는 이해관계인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이해관계인 심판참여 신청서에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열람 또는 복사 신청서) 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 6. 25.]

[중전 제21조의2는 제21조의3으로 이동 <2019. 6. 25.>]

제21조의3(재결서 등본의 청구) 영 제61조에 따른 재결서 등본의 발급청구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6. 25.>

[본조신설 2016. 7. 12.]

[제21조의2에서 이동, 중전 제21조의3은 제21조의4로 이동 <2019. 6. 25.>]

제21조의4(제2심 청구서)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제2심 청구서는 조사관이 제2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르고, 조사관 외의 자가 제2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6. 25.>

[본조신설 2016. 7. 12.]

[제21조의3에서 이동, 중전 제21조의4는 제21조의5로 이동 <2019. 6. 25.>]

제21조의5(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조사관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6서식에 따르고, 조사관 외의 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7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6. 25.>

[본조신설 2016. 7. 12.]

[제21조의4에서 이동 <2019. 6. 25.>]

제22조(면허취소 및 업무정지 재결의 집행) ① 중앙심판원과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이하 “수석조사관”이라 한다)은 해양안전심판의 결과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대한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게 해기사 면허증 또는 도선사면허증을 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해기사가 승선 등의 이유로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4일 이내를 말한다)에 제출할 것을 문서로 알려야 하며, 재결 집행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면허증을 발급한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면허관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8., 2016. 7. 12.>

- ② 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해기사면허원부 또는 도선사면허원부(이하 “면허원부”라 한다)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 ③ 수석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면허증 제출 통지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82조에 따른 면허증 무효선언에 관한 절차를 밟고 그 사실을 면허관청에 알려야 한다.
- ④ 수석조사관은 업무정지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그날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 날)에 해당 면허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3조(견책재결의 집행) ① 수석조사관은 해양안전심판의 결과 해기사나 도선사에 대한 견책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견책재결의 요지를 면허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면허원부에 적어야 한다.

제24조(징계기록부의 작성) ① 중앙심판원장은 업무정지나 견책의 징계를 받은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대한 징계사항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징계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징계기록부는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징계기록 말소의 요청) ① 중앙심판원장은 법 제81조의2에 따라 징계가 실효(失效)된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대해서는 면허원부의 징계기록을 말소할 것을 해당 면허관청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기록의 말소 요청을 받은 면허관청은 면허원부의 징계기록을 말소하고, 그 사람에 대한 면허원부를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면허관청은 제2항에 따라 징계기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중앙심판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수수료) 법 제88조에 따라 재결서·결정서 등의 등본을 발급받거나, 심판원 안에 설치된 장비를 이용하여 심판조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복사하려는 사람은 발급 또는 교부받은 종이로 된 등본 또는 복사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국선 심판변론인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19. 6. 25.]

제27조(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운영) 중앙심판원장은 법 제88조의3에 따라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사고 접수, 심판청구 등 조사업무 진행사항 등록
2. 심판접수, 심판재결 등 심판업무 진행사항 등록
3. 재결집행사항 및 징계내역 등록
4. 각종 해양사고통계자료 작성 및 표출
5. 재결서, 의견진술서 등 조사·심판자료 등록 및 열람
6. 그 밖에 조사·심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 12. 28.]

부칙 <제532호, 2012. 11.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사보좌인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교통부령 제885호 해난심판법시행규칙 부칙 제2항에 따라 폐지된 해사보좌인등록규칙에 따라 해사보좌인으로 등록한 자는 이 규칙에 따라 심판변론인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호, 2013. 3. 24.>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0>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84호, 2014. 6. 2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호,2014. 9.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호,2015. 1. 8.>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 지방해양항만청장 ” 을 “ 지방해양수산청장 ” 으로 한다.

⑬부터 1(까지 생략

부칙 <제195호,2016. 7.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격영상심판의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양안전심판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면허취소 및 업무정지 재결의 집행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대한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재결에 따라 해기사면허증 또는 도선사면허증의 제출을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6호,2017. 3. 1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47호,2019. 6. 25.>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2호,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해양사고 통보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한 준해양사고를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52호, 2024. 2. 5.> (해양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3호 중 “ 「해사안전법」 제2조 ” 를 “ 「해양교통안전법」 제2조제19호 ” 로 한다.

⑩ 생략

제6조 생략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관할 이전 신청서

| | | |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사건번호 | |
| | 사건명 | |
| | 이전을 받으려는 심판원 | |
| | 신청이유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할 이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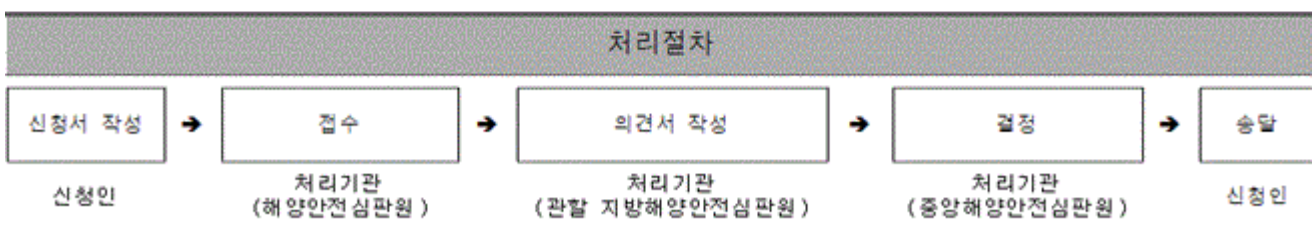
| | |
|---------------------|-----------|
| 문의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 수수료
없음 |
|---------------------|-----------|

(주소: / 전화번호:)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주소: / 전화번호:)

※ 신청인은 관할 지방해양안전심판원 또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중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한 곳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12. 28.>

심판변론인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일 |
| 성명 | (한글)
(한자)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사무소의 소재지 | | | |
| 자격취득 근거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호 |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 2장 | 수입인지(1천원)
(이 날이 부족할 때에는 뒷면에 붙여 주십시오)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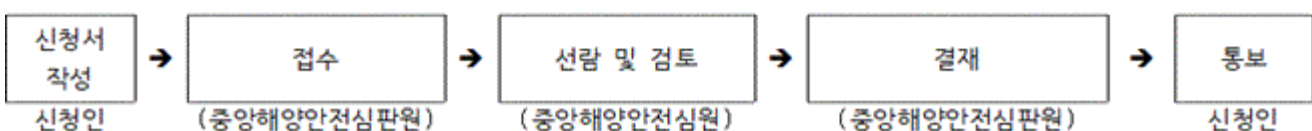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호에 따른 심판변론인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의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전화번호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심판변론인 등록대장

| 등록번호 | 성명 | 자격 | 사무소의 소재지 | 등록 연월일 | 등록말소 연월일 | 계인(契印)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6. 25.>

| | |
|---|--|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bottom: 20px;"> 등록번호 제 호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20px;"> <h2 style="margin: 0;">심 판 변 론 인 등록증</h2> </div> <div style="margin-bottom: 20px;"> <p>성 명:</p> <p>생 년 월 일:</p> <p>자격취득 근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호</p> <p>「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판변론인으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p>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bottom: 20px;"> <p>년 월 일</p>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margin-top: 100px;">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div style="border: 2px solid orange;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width: 100px;"> 직인 </div> </div> | <div style="margin-bottom: 20px;"> <p>사진
반영함판</p> </div> |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9.18.>

심판변론인 등록부

사진
반명함판

| | | | | |
|------------|-------|--------------|--------|----------|
| 등록번호 | | 제 호 | 등록 연월일 | |
| 성명 | | (한글)
(한자) | 생년월일 | |
| 자격증 | | | 주소 | |
| 자격취득 근거 | | | | |
| 등록취소 연월일 | | | 취소 사유 | |
| 사무소 소재지 변경 | 연월일 | 사무소의 소재지 | 연월일 | 사무소의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심판변론인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등록번호 | 제 호 | | |
| 신고인 | 성명(한글)
(한자) | 생년월일 | |
| |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 |
| | 변경 후 | | |
| 변경 사유 | |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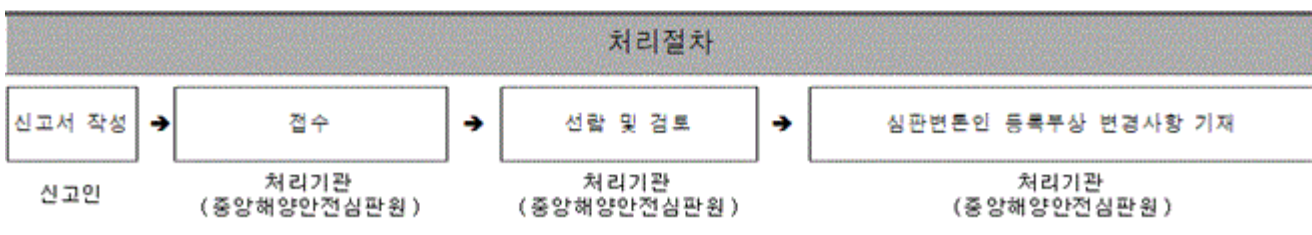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귀하

문의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전화번호:)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9.18.>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 | | |
|------------|-----|--|
| 사건번호 및 사건명 | | |
| 해양사고관련자 | 성 명 | |
| | 주 소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구 사유)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 월 소득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50퍼센트에 해당되는 금액 미만의 사람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 그 밖에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이 국선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을 청구합니다.

해양사고관련자와의 관계

- [] 본인 []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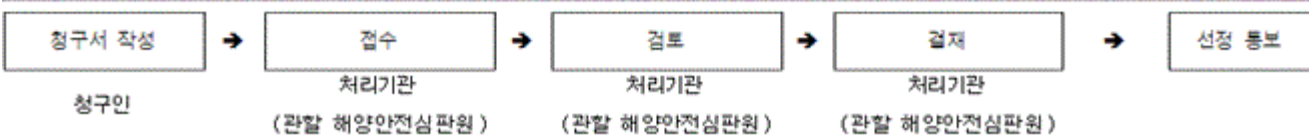
청구인

(서명 또는 인)

OO 해양안전심판원 귀하

| | | |
|------|---|-----------|
| 첨부서류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2. 5.> 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www.kmst.go.kr)에서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준해양사고 통보서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 | | | |
|-------------|---|---------|--------------|---------|
| 통보자
인적사항 | 성명
(대표자명) | | 회사명
(해당시) | |
| | 연락처 | | 전자우편 | |
| 준해양사고명 | | | | |
| 준해양사고 종류 | []충돌 []접촉 []좌초 []침몰 []화재 []오염 []인명 []기관 []그 밖의 준해양사고 | | | |
| 선종 | []벌크선 []컨테이너선 []자동차선 []여객선(카페리선, 화객선 등)
[]탱커선 []액화가스선 []케미컬선 []예선 []그 밖의 선박 | | | |
| 선박상태 | []항해 중 []정박 중 []계류 중 | 발생일시 | | |
| 발생장소 | | | 지리적 위치 | |
| 기상상태 | []맑음 []비 []안개 []기타() | 바람방향/세기 | / | 노트 |
| 해상상태 | 시정 | 마일 | 파고/조류 | 미터 / 노트 |
| 개요 | | | | |
| 원인 | | | | |
| 개선사항 | | |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해양사고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자

(서명 또는 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귀하

210mm × 297mm [백상지 80g/㎡]

작성 방법

1. “준해양사고 종류”는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시정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면 발생할 수 있는 해양사고의 종류를 말하며, 해양사고 종류별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충돌 : 항해중이거나 정박 중임을 불문하고 다른 선박과 부딪치거나 맞붙어 닿은 것(선박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간 충돌을 포함한다). 다만, 수면하의 난파선과 충돌한 것은 제외한다.

나. 접촉 : 다른 선박이나 해저를 제외하고 외부물체나 외부시설물에 부딪치거나 맞붙어 닿은 것. 다만, 수면 아래의 시설물 등과 선체가 부딪쳐서 침수되거나 선체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좌초로 분류한다.

다. 좌초 : 해저, 암초, 수면 아래의 난파선 또는 간출암(썰물 때만 드러나는 바위)이나 해안가 등에 얹히거나 부딪친 것.

라. 침몰 : 악천후 조우, 외판 등의 균열이나 구멍, 절단 등에 의한 침수의 결과 가라앉은 것.

마. 화재 : 불로 인하여 재산·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

바. 오염 :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에 따른 기름, 유해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 및 폐기물 등의 유출로 인한 해양오염피해가 생긴 것.

사. 인명 :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

아. 기관 : 「선박기관기준」 제2조에 따른 주기관, 보일러, 주요한 보조기관 또는 주기관·보일러·주요한 보조기관 등에 연료·운환유·공기·냉각수 등을 공급하기 위한 펌프 등 선박추진과 관련된 기기 등이 손상된 것.

2. “발생장소”는 조타실, 기관실, 갑판 등 구체적인 장소를 말하며, 지리적 위치는 위도·경도 또는 항구명을 기재할 수 있다.

3. “선박상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19호를 따른다.

4. “개요”는 상황의 인과관계 파악을 위해 준해양사고의 관련자, 장소, 시기 및 연결고리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5. “원인”은 인적요류, 구조, 기계, 장비, 외부요인 등 분석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6. “개선사항”은 잠재적 손실 및 심각성을 고려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설 2016. 7. 12.>

조 사 관 신 분 증

(앞쪽)

해양사고조사관
(Marine Investigator)

사 진
3cm × 4cm

홍길동
Hong Gildong
해양수산부
REPUBLIC OF KOREA

(뒤쪽)

ID No. 001

Investigator's ID Card

The bearer of this identity card is duly appointed as a Marine Investigator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under IMO Casualty Investigation Code[IMO Res.MSC.255(84)].
이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은 국제해사기구 결의서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해양사고조사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January 10, 2014

Commissioner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직인
인영

53mm × 85mm [PVC(비닐) 900g/m²]

※ 비고 : 서식 중 밑줄 친 부분은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하되, 영문 이름은 위 형식을 유지할 것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심판불필요처분사건 심판신청서

| | | | |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 주소
(전화번호:) | | |
| 신청내용 | 사건명 | | |
| | 불필요처분 날짜 | | |
| | 이해관계 여부 | | |
| | 신청이유 |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판불필요처분사건의 심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O 지방해양안전심판원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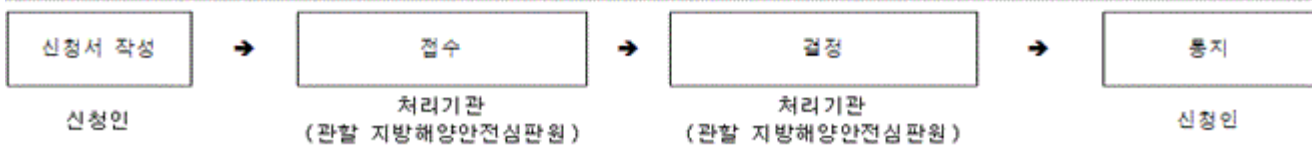
문의처: OO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수수료

없 음

(주소: / 전화번호:)

처리절차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 6. 23>

이해관계인 심판참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5일 |
| 이해관계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사건진행번호 | ○○ 해심 제 - 호 | |
| 사 건 명 | | |
| 신 청 사 유
(이해 관계) |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판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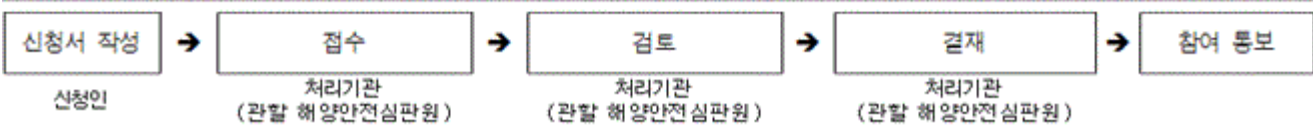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문의처(전화번호: / 팩스번호:)

OO해양안전심판원 심판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 음 |
|------|---|------------|

처리절차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9. 6. 25.>

심판조서 등의 열람·복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 | | |
|------------------|--|------|--|------|----|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1일 |
| 신청인 | 성명 | | | 생년월일 | |
| | 주소
(전화번호:) | | | | |
| 사건진행번호
(재결번호) | ○○ 해심 제 - 호 | | | | |
| 사건명 | | | | | |
| 구분 | [] 열람 [] 복사 | | | | |
| 복사 방식 | [] 필사 [] 심판원 장비 [] 신청인 장비 [] 기타() | | | | |
| 범위(구체적) | | | | | |

위와 같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열람·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귀하

위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함.

(1) 열람·복사의 허용 여부(허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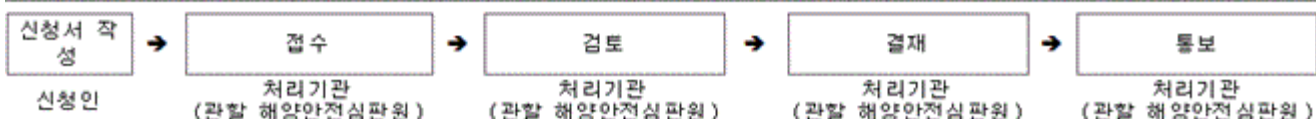
(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내용:

○○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직인

문의처: ○○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전화번호:)

수수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6조에 따른

처리절차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개정 2019. 6. 25.>

재결서 등본 발급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일 |
| 청 구 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 주 소
(전화번호:) | | |
| 재 결 번 호 | ○○ 해심 제 - 호 | | |
| 사 건 명 | | | |
| 재 결 년 월 일 | | | |
| 청 구 사 유 | | | |
| 통 수 | |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3에 따라 재결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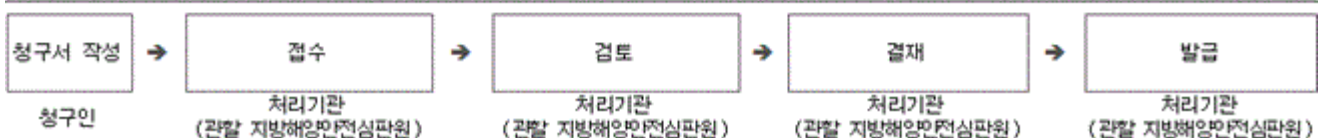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귀하

문의처: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전화번호:)

수수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 따
를,
본란이 부족시는 뒷면에
첨부

처리절차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 <개정 2019. 6. 25.>

제2심 청구서

| | | | |
|---------|-----------------------|------|--|
| 청구인 | 소속 및 직책 | 성 명 | |
| |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 | |
| 사 건 명 | | | |
| 재결번호 | ○○ 해심 제 - 호 | 재결일자 | |
| 청 구 사 유 | |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제2심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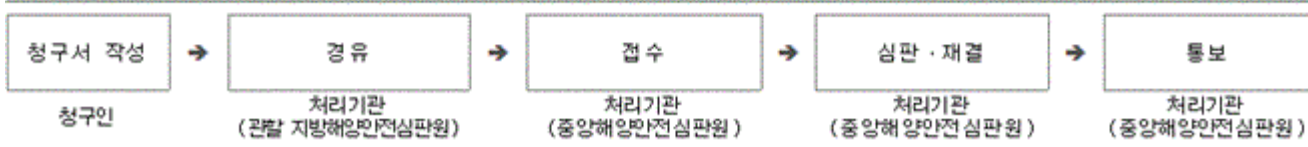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지방해양안전심판원 경유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귀하

처리절차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5서식] <개정 2019. 6. 25.>

제2심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 |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청 구 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 주 소
(전화번호:) | | |

청 구 내 용

| | | | | | |
|--------------------|---------|---|---|------|---|
| 사 건 명 | | | | | |
| 제1심
지방법양안전심판원 | | | | | |
| 제1심 재결일자
및 재결번호 | 년 | 월 | 일 | 재결 제 | 호 |
| 청구사유 | 이 유 별 첨 | | |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제2심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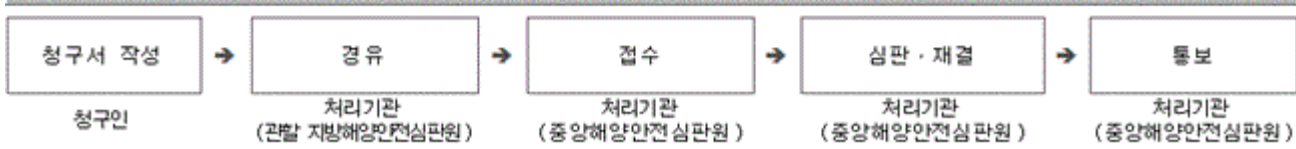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지방해양안전심판원 경유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귀하

처리절차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6서식] <개정 2019. 6. 25.>

이의신청서

| | | |
|--------|---|-----|
| 신청인 | 소속 및 직책 | 성 명 |
| |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 |
| 사건진행번호 | | |
| 사 건 명 | | |
| 신청 사유 | 1. 변경 또는 취소를 구하는 원 결정
2. 변경 또는 취소를 구하는 이유
가. 원 결정을 어떠한 이유로 어떻게 변경할 것을 구하는지
나. 원 결정은 심판절차를 정한 법령의 어느 조항에 위반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지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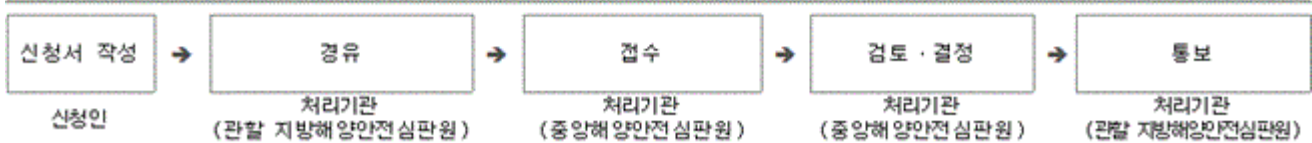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해양안전심판원 경유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귀하

처리절차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 7서식] <개정 2019. 6. 25.>

이 의 신 청 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
| 신 청 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사건진행번호 | OO 해심 제 - 호 | | |
| 사건명 | | | |
| 결정 일자 | | | |
| 신청 사유 | | | |
| 관계서류 및 증거물 | |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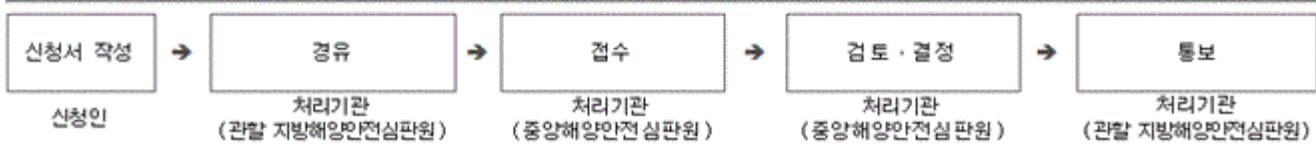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OO 지방해양안전심판원 경유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귀하

문의처: OO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전화번호:)

처리절차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7. 3. 15.>

징계기록부

수상레저관련법규

1. 수상레저안전법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3.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4. 유선 및 도선 사업법
5.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9.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수상레저안전법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99호, 2024. 12. 20.,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법령) 032 - 835 - 2351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조종면허) 032 - 835 - 2552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수상레저시스템) 032 - 835 - 2652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수상레저사업) 032 - 835 - 24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2. “래프팅”이란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계곡이나 하천에서 노를 저으며 급류 또는 물의 흐름 등을 타는 수상레저활동을 말한다.
3.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활동에 사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동력수상레저기구와 무동력수상레저기구로 구분된다.
4. “동력수상레저기구”란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서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고무보트,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무동력수상레저기구”란 동력수상레저기구 외의 수상레저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7. “해수면”이란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8.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제3조(적용 배제)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도선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제5조의 조종면허를 자격요건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제16조 및 제17조를 적용한다.

제4조(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수상레저 관련 정책 환경의 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수상레저 관련 중장기 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등에 관한 사항
3. 수상레저안전관리 체계의 발전에 관한 사항
4. 수상레저안전관리를 위한 민·관 협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상레저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2장 조종면허

제5조(조종면허) 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사람은 제8조에 따른 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조종면허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조종면허 : 제1급 조종면허, 제2급 조종면허
2. 요트조종면허

③ 일반조종면허의 경우 제2급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급 조종면허를 받은 때에는 제2급 조종면허의 효력은 상실된다.

④ 조종면허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외국인에 대한 조종면허의 특례) ①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및 제2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수상레저기구의 종류·조종기간 및 지역, 국제경기대회의 종류와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조종면허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종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4세 미만(제1급 조종면허의 경우에는 18세 미만)인 사람. 다만,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정신질환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독자 중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으로서 그 위반한 날부터 1년(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달아난 사람은 이를 위반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통보방법과 그 밖에 개인정보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면허시험) ① 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이하 “면허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② 면허시험은 필기시험·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③ 면허시험의 실기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④ 면허시험의 과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면허시험의 면제) 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면허시험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시험(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에 한정한다) 과목의 전부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 관련 단체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수로 등록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 학과를 졸업하였을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나. 해당 면허와 관련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였을 것
3.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해기사 면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를 가진 사람
4.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용 등에 관한 교육·훈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해당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해양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6. 제1급 조종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제2급 조종면허 실기시험으로 변경하여 응시하려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시험 면제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은 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내용을 운영하여야 하고, 인적·장비·시설 등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교육내용 운영과 인적·장비·시설 등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종사자의 준수사항 및 면허시험 면제자에 대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 해양경찰청장에게 교육 이수 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면허시험 과목의 전부를 면제하게 한 경우

3.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제9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시험을 중지하게 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시험의 중지 또는 무효의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12조(조종면허증의 갱신 등) ①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 갱신 기간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면허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증을 갱신하려는 사람이 군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면허증을 갱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을 미리 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1. 최초의 면허증 갱신 기간은 면허증 발급일부터 기산하여 7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2. 제1호 외의 면허증 갱신 기간은 직전의 면허증 갱신 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7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갱신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부터 조종면허의 효력은 정지된다. 다만, 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후 면허증을 갱신한 경우에는 갱신한 날부터 조종면허의 효력이 다시 발생한다.

제13조(수상안전교육) ① 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8조에 따라 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부터, 면허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제12조에 따른 면허증 갱신 기간 이내에 각각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수상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 면허시험 합격 전의 안전교육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1. 수상안전에 관한 법령
2. 수상레저기구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상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경찰청장은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안전교육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인적·장비·시설 등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안전교육 위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교육 수료에 관한 증서를 발급한 경우
3.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면허증 발급) 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에 합격하여 면허증을 발급하는 경우
2. 제12조에 따라 면허증을 갱신하는 경우

② 조종면허의 효력은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발급한 때부터 발생한다.

③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고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면허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면허증 휴대 등 의무) 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사람은 면허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종자는 조종 중에 관계 공무원이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면 면허증을 내보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면허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조종면허의 취소·정지) ① 해양경찰청장은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종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조종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면 조종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면허를 받은 경우
 2. 조종면허 효력정지 기간에 조종을 한 경우
 3.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살인 또는 강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4.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조종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 경우
 5.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조종면허를 받은 경우
 6.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로 한정한다)
 7.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8.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조종하게 한 경우
 9. 제28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사람은 조종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8조(면허시험 업무의 대행) ①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시험대행기관의 장, 책임운영자 또는 종사자가 면허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지시 또는 묵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면허시험 대행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시험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 대행업무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면허시험 대행업무에 대하여 처리 내용을 확인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의 대행과 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정지 절차, 제3항에 따른 보고 및 제4항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에 대한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종사자 교육) ①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에서 시험·교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대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안전준수의무

제20조(안전장비의 착용)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제21조(운항규칙 등의 준수)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 방법, 기구의 속도 및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운항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기상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의 제한) 누구든지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는 수상레저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태풍·풍랑·폭풍해일·호우·대설·강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2.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0.5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

제23조(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①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입 신고를 하거나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에 따른 출항·입항 신고를 한 선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이하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라 한다)가 아닌 수상레저기구로 수상레저활동

동을 하려는 사람은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안전관리 선박의 동행, 선단의 구성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사고의 신고 등) ①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양경찰관서,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수상레저기구에 동승한 사람이 사고로 사망·실종 또는 중상을 입은 경우
2. 충돌, 좌초 또는 그 밖에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명구조, 사고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후에 사고 장소가 해수면인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내수면인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무면허조종의 금지) 누구든지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급 조종면허를 가진 사람의 감독하에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조종면허를 가진 사람과 동승하여 조종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6조(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 ①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해양경찰서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구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해양경찰서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7조(주취 중 조종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7. 25., 2024. 12. 20.>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은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이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그 측정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4. 12. 20.>

1. 경찰공무원

2. 시·군·구 소속 공무원 중 수상레저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관계공무원(근무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해당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

④ 제2항에 따라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제28조(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 금지)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의 영향,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영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12. 20.>

제29조(정원 초과 금지)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하여 사람을 태우고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안전관리

제30조(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수상레저기구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시정명령)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에 대한 시정명령은 사고의 발생이 명백히 예견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수상레저기구의 탑승(수상레저기구에 의하여 밀리거나 끌리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인원의 제한 또는 조종자의 교체
2. 수상레저활동의 일시정지
3. 수상레저기구의 개선 및 교체

제32조(일시정지·확인 등) ① 관계공무원은 수상레저기구를 타고 있는 사람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기구를 멈추게 하고 이를 확인하거나 그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면허증이나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를 멈추게 하고 면허증 등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3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①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내수면에서의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관계 경찰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일정 구역의 수상레저활동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4조(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설립 등) ①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대한 연구·개발, 홍보 및 교육훈련 등 해양경찰청장 등의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수상레저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수상레저 관련 종사자의 안전관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1. 수상레저안전 및 수상레저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사업
 2. 조종면허시험관리시스템 및 수상레저기구등록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3. 조종면허시험, 수상레저기구 등록·안전검사·안전점검의 대행
 4. 수상레저사업자 및 수상레저활동자 등에 대한 인명구조교육, 수상안전교육 및 관련 장비·교재의 개발
 5.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업무
 6.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④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회가 제3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협회의 정관·업무·회원자격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수상레저활동안전협회의 운영) ① 시·도지사는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안전협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를 위해 시·도지사에게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구성·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6조(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5장 수상레저사업

제37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등) ①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을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이하 “수상레저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수상레저사업자에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1.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2.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3. 영업구역이 둘 이상의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를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수상레저사업자는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등록 전에 해당 영업구역을 관할하는 다른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절차 및 영업구역 조정 등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사업등록의 유효기간 등) ①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되, 10년 미만으로 영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기간을 등록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39조(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4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40조(권리·의무의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레저사업 등록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1. 수상레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수상레저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수상레저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제41조(휴업 등의 신고) ① 수상레저사업자가 등록된 사업기간 중에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2.>

② 수상레저사업자가 30일 이상 휴업한 후 수상레저사업을 다시 개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2.>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업이나 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휴업이나 폐업 또는 재개업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이용요금) 수상레저사업자는 탑승료·대여료 등 이용요금을 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3조(안전점검) 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상레저기구와 선착장 등 수상레저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비 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수상레저기구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상·항목·시기·절차 및 점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사업자의 안전점검 등 조치) ①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상레저기구와 시설의 안전점검
2. 영업구역의 기상·수상 상태의 확인
3. 영업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구호조치 및 해양경찰관서·경찰관서·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
4. 이용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조치 및 탑승 전 안전교육
5. 사업장 내 인명구조요원이나 래프팅가이드의 배치 또는 탑승
6. 비상구조선(수상레저사업장과 그 영업구역의 순시 및 인명구조를 위하여 사용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배치

②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영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4세 미만인 사람(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술에 취한 사람 또는 정신질환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거나 이들에게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행위
2.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하여 태우는 행위
3. 수상레저기구 안에서 술을 판매·제공하거나 수상레저기구 이용자가 수상레저기구 안으로 이를 반입하도록 하는 행위
4. 영업구역을 벗어나 영업을 하는 행위
5. 제26조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시간 외에 영업을 하는 행위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인화물질 등의 위험물을 이용자가 타고 있는 수상레저기구로 반입·운송하는 행위
7.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
8. 비상구조선을 그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행위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이나 래프팅가이드의 자격 및 배치기준, 제1항제6호에 따른 비상구조선의 배치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수상레저기구를 운영하는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수상레저기구의 운영,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6조(영업의 제한 등) 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사업자에게 영업구역이나 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체가 직접 수면에 닿는 수상레저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영업행위에 대해서만 이를 명할 수 있다.

1. 기상·수상 상태가 악화된 경우
2. 수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유류·화학물질 등의 유출 또는 녹조·적조 등의 발생으로 수질이 오염된 경우
4. 부유물질 등 장애물이 발생한 경우
5.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유해생물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소멸되거나 완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구역이나 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47조(자료 제출 등)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자에게 관련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기간 만료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4.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상한 경우
5. 수상레저사업자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사업에 이용한 경우
6. 제37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42조부터 제46조까지, 제49조제2항, 제50조의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6장 보험

제49조(보험등의 가입) ①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용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수상레저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0조(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수상레저사업자는 제49조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사자 및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1조(보험등의 가입정보 요청) ①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9조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과 관련한 조사·관리를 위하여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11장제1절의 보험협회등(이하 “보험협회등”이라 한다)에 보험등의 가입과 관련한 조사·관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보험협회등을 통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2조(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운영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보험등 가입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과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협회등이 관리·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이나 이와 유사한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이하 “가입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협회등에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가입관리전산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보험등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① 보험회사등은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자기와 보험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자기와 보험등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계약을 해지한 경우
3. 자기와 보험등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험등에 가입되지 아니한 보험등 가입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보험등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54조(보험등 미가입자에 대한 등록 등 처분의 금지) ①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49조에 따른 보험등 가입의무자가 보험등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하여 보험등에 가입된 경우에만 등록 신청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1.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가 보험등 가입이 의무화된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9조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2. 수상레저사업자가 제37조 또는 제41조제2항에 따라 수상레저사업 등록 신청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등 가입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권한의 위탁) 해양경찰청장은 가입관리전산망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협회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56조(과징금) ①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또는 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그 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2. 안전교육 위탁기관: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3. 시험대행기관: 제18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또는 시험대행기관이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이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57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2.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3. 제15조에 따라 면허증의 발급, 재발급, 갱신을 신청하려는 사람

4. 제37조와 제41조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의 등록·변경등록 및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등을 신청하려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대행기관 등에 내야 한다.

1. 제13조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험대행기관이 면허시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이 수수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이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면허시험을 응시하거나, 안전교육을 받기 위하여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청문) 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
 3. 제18조제2항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
- ②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8조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 및 제55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협회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2. 20.>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자
2.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
3.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
4.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27조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5. 제28조를 위반하여 약물복용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

6.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상레저사업을 한 자
7. 제48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등록취소 후 또는 영업정지기간에 수상레저사업을 한 자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제2항에 따른 정비·원상복구의 명령을 위반한 수상레저사업자
2. 제44조를 위반하여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금지된 행위를 한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
3. 제46조에 따른 영업구역이나 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 명령을 위반한 수상레저사업자

제6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1조 및 제6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 12. 20.>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2.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시간 외에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
- 2의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
- 2의3.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27조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 2의4. 제28조를 위반하여 약물복용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
3. 제29조를 위반하여 정원을 초과하여 조종한 사람
4.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
5.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상레저사업자
6. 제42조에 따라 신고한 이용요금 외의 금품을 받거나 신고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수상레저사업자
7. 제45조에 따른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
8. 제47조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수상레저사업자

9.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수상레저사업자
10. 정당한 사유 없이 제50조를 위반하여 보험등의 가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알린 수상레저사업자
11.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2. 제20조를 위반하여 인명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람
 3. 제21조를 위반하여 운항규칙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람
 4. 제22조를 위반하여 기상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이 제한되는 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
 5.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6.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로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
 7.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8. 제3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9. 제32조에 따른 일시정지나 면허증·신분증의 제시명령을 거부한 사람
 10.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면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내수면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부칙 <제18958호, 2022. 6. 10.>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제60조의 개정규정 중 보험회사등 및 보험협회등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조종면허의 결격사유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조종면허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이 법 제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제3조**(조종면허의 취소·정지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에 따른 조종면허의 취소·정지 사유가 있는 경우 이 법 제1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제4조**(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하여 벌칙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한 수상레저사업 등록에 관한 결격사유는 이 법 제3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안전점검 결과 공개에 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는 이 법 시행 이후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에 행위로써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7조(조종면허 및 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은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 제5조에 따른 조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18세 미만인면서 제1급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은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급 조종면허를 유효하게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은 이 법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안전교육 위탁기관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시험대행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면허시험업무 대행기관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금지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면허조종, 야간 수상레저활동, 주취 중 조종,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 정원 초과 탑승을 한 경우에는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제12조(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한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는 이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로 본다.

제13조(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제29조에 따라 구성된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는 이 법 제35조에 따라 구성된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로 본다.

제14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등록 등을 한 것은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 등을 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사업등록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의3에 따라 사업등록을 한 자는 해당 사업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 제38조에 따른 사업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제41조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제40조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으로 본다.

제17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제51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제48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본다.

제18조(신청, 신고, 통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신청, 신고, 통보 등은 이 법에 의한 신청, 신고, 통보 등으로 본다.

제19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수수료를 내어야 하는 행위에 대하여 수수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징금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5제2항제6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를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로 한다.

②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7호를 삭제한다.

③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④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로, “같은 조 제7호”를 “같은 조 제8호”로 한다.

⑤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제2항제1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45조”를 “「수상레저안전법」 제43조”로 한다.

⑥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자 및 같은 법 제39조제1항”을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자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또는 그 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다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573호,2023. 7. 25.> (해상교통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 「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 ”을 “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 ”으로 한다.

⑫부터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0599호,2024. 12.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43호,2025. 4. 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5. 12. 21.] [대통령령 제35916호, 2025. 12. 16.,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법령) 032 - 835 - 2351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조종면허) 032 - 835 - 2552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수상레저시스템) 032 - 835 - 2652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수상레저사업) 032 - 835 - 24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레저기구의 종류) ①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고무보트,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1. 수상오토바이
2. 모터보트
3. 고무보트
4.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스쿠터
6. 공기부양정(호버크라프트)
7. 수륙양용기구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와 비슷한 구조·형태·추진기관 또는 운전방식을 가진 것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기구

②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1. 수상스키(케이블 수상스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파라세일
3. 조정
4. 카약
5. 카누
6. 워터슬레이드
7. 수상자전거
8. 서프보드

9. 노보트
10. 무동력 요트
11. 윈드서핑
12. 웨이크보드(케이블 웨이크보드를 포함한다)
13. 카이트보드
14.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
15. 플라이보드
16. 패들보드
1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와 비슷한 구조·형태 또는 운전방식을 가진 것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기구

제3조(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른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이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해양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2장 조종면허

제4조(조종면허 대상 및 기준) 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사람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로서 추진기관의 최대 출력이 5마력 이상(출력 단위가 킬로와트인 경우에는 3.75킬로와트 이상을 말한다)인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한다.

② 조종면허의 발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일반조종면허
 - 가. 제1급 조종면허: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수상레저사업의 종사자, 제17조제1항 제2호 및 별표 9 제1호나목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
 - 나. 제2급 조종면허: 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를 받아야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세일링요트는 제외한다)를 조종하려는 사람
2. 요트조종면허: 세일링요트를 조종하려는 사람

제5조(조종면허의 결격사유)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또는 알코올 중독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중독자로서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조종면허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
2. 병무청장
3.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4.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이하 “정신의료기관의 장”이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람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개인정보는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로서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6개월마다 한 번 이상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면허시험의 실시)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이하 “면허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면허시험의 일시·장소, 시험 과목 등 면허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② 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필기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① 면허시험의 필기시험(이하 “필기시험”이라 한다)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② 필기시험은 객관식 시험으로 실시한다. 다만, 글을 알지 못하여 필기시험을 치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구술시험으로 필기시험을 대신할 수 있다.

③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일반조종면허: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제1급 조종면허는 70점 이상, 제2급 조종면허는 60점 이상일 것
2. 요트조종면허: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일 것

- ④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 합격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면허시험에서만 그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 ⑤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그 불합격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시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9조(실기시험의 방법 등) ① 면허시험의 실기시험(이하 “실기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나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② 실기시험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일반조종면허: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제1급 조종면허는 80점 이상, 제2급 조종면허는 60점 이상일 것
 2. 요트조종면허: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일 것
- ③ 실기시험의 채점기준과 운항코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④ 해양경찰청장은 실기시험을 실시할 때 응시자로 하여금 별표 3에 따른 규격에 적합한 실기시험용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게 해야 한다. 다만, 실기시험 응시자가 따로 준비한 동력수상레저기구가 별표 3에 따른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는 실기시험에 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⑤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그 불합격한 날의 다음다음 날부터 다시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기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면허시험의 면제 등)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 관련 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를 말한다.

- ② 법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 학과”란 동력수상레저기구와 관련된 과목을 6학점 이상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학과를 말한다.
- ③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항해사、기관사、운항사、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또는 소형선박 조종사의 면허를 말한다.
- ④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 과목의 면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면허시험(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로 한정한다) 과목의 전부를 면제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일 것

- 가. 경찰, 해양경찰, 소방 또는 국방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와 유사한 수상기구를 운영·관리하는 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
 교
 라. 그 밖에 수상레저활동 관련 교육기관이나 단체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2. 별표 5에 따른 인적기준·장비기준 및 시설기준을 갖출 것

②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
 경찰청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
 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또는 해양경
 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 운영해야 하는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제2급 조종면허 시험 면제의 경우: 수상레저 관계 법령, 수상 상식, 구급 및 응급처치, 모터
 보트 개요, 항해 및 기관(機關), 조종술(操縱術)

2. 요트조종면허 시험 면제의 경우: 수상레저 관계 법령, 수상 상식, 구급 및 응급처치, 요트 개
 요, 항해 및 기관, 범주법(帆走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11조제3항에 따
 른 지정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13조(조종면허증의 갱신 연기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군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군 복무 중(「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
 로 복무 중인 경우

2. 국외에 체류 중인 경우

3.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4.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어 움직일 수 없는 경우

5.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6.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이하 “면허
 증”이라 한다)의 갱신을 미리 하거나 연기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면허증의 사전 갱신: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면허증 갱신 기간의 시작일 전날까지
2. 면허증의 갱신 연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면허증 갱신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허증을 미리 갱신하여 발급하거나 면허증의 갱신을 연기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면허증의 갱신이 연기된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면허증을 갱신해야 한다.

제14조(수상안전교육의 면제대상)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라 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날 또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면허증 갱신 기간의 시작일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
 - 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상안전교육
 - 나. 「선원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기초안전교육 또는 상급안전교육
2.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제2급 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시험 과목의 전부를 면제받은 사람
3.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면허증 갱신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내에 법 제19조에 따른 종사자 교육을 받은 사람

제15조(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상안전교육 사무를 위탁받아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안전교육 위탁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일 것
2. 최근 3년 이내에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3. 별표 7에 따른 인적기준, 시설기준 및 장비기준을 갖추는 것
- ② 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 ③ 해양경찰청장은 안전교육 위탁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또는 해양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안전교육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17조(시험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면허시험의 실시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일 것
2. 시험장별로 별표 9에 따른 인적기준·장비기준 및 시설기준을 갖추는 것

②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시험대행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또는 해양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8조(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19조(시험대행기관에 대한 감독 등) ① 시험대행기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면허시험을 대행한 실적을 매 반기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실적을 제출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시험대행기관의 대행업무 실적에 관한 확인 또는 감독을 위하여 시험대행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안전준수의무

제20조(운항방법 등의 준수) ①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법 제21조에 따라 별표 11에서 정하는 운항방법 및 기구의 속도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람이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이하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라 한다)를 이용할 때에는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운항구역만을 운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라 운항구역을 평수구역(平水區域)으로 지정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평수구역의 끝단 및 가까운 육지 또는 섬으로부터 10해리[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機關)을 사용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는 5해리로 한다] 이내의 연해구역(沿海區域)을 운항하는 경우

2.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라 운항구역을 평수구역으로 지정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운항구역을 연해구역 이상으로 지정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와 500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동시에 운항하기 위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운항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제21조(수상레저활동 제한의 예외) 법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상특보 중 풍랑, 폭풍해일, 호우, 대설, 강풍 주의보가 발효된 경우로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기 위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상특보활동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제22조(수상레저기구의 정원 산출기준) ① 법 제29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안전검사에 따라 결정되는 정원으로 한다.

- ②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은 해당 수상레저기구의 좌석 수 또는 형태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원을 산출할 때에는 수난구호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승선한 인원은 정원으로 보지 않는다.

제4장 안전관리

제23조(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지부 또는 사업소를 포함한다)
4.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자격, 가입, 탈퇴 및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협회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제도의 연구·개발 및 홍보
2. 수상레저활동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수상레저안전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도
4. 수상레저기구 안전기술의 조사 및 연구
5. 수상레저산업 관련 국내외 협력
6. 수상레저산업의 현황 및 통계조사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수상레저사업자
2. 수상레저활동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3. 그 밖에 협회의 정관에서 회원으로 정하는 사람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2.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3.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수상레저활동안전협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이하 “안전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제도의 개선 및 보완
2. 수상레저활동 안전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업무의 협조
3. 수상레저활동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
4. 그 밖에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안전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것
2. 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중에서 조례로 정하거나 시·도지사가 지명하도록 할 것
3. 안전협의회의 위원은 수상레저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상레저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수상레저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할 것
4. 안전협의회 회의의 소집권자 및 소집절차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제5장 수상레저사업

제25조(안전점검의 대상 및 절차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의 대상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성(「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안전검사의 대상이 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제외한다)
2.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이하 “수상레저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장에 설치된 시설·장비 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의 조치 의무
4. 법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이나 래프팅가이드의 자격 및 배치기준 준수 의무
5. 법 제4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의 행위제한 등의 준수 의무
- ②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목적·대상 및 점검 일시 등을 안전점검 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다만, 재난·재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개월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안전점검을 실시한 수상레저기구 또는 수상레저시설의 명칭 및 위치
 2. 안전점검의 실시기간
 3. 안전점검 결과의 내용 및 조치계획
 4. 그 밖에 안전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이나 래프팅가이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5. 12. 16.>

1. 인명구조요원: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을 갖춘 사람
2. 래프팅가이드: 별표 12에 따른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단체 또는 법인 중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인명구조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래프팅가이드 자격을 취득한 사람
- ② 교육기관의 지정·지정취소, 관리·감독, 인명구조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③ 인명구조요원은 해당 수상레저사업의 영업구역에 배치해야 한다.
- ④ 래프팅가이드는 영업 중인 래프팅기구마다 1명 이상 탑승하여 영업구역의 안전 상태와 탑승객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래프팅가이드가 다른 래프팅기구에 탑승하여 근접운항하면서 영업구역의 안전 상태와 탑승객의 안전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운항수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사업장과 영업구역의 물의 깊이, 유속(流速), 운항거리, 급류의 세기 등을 고려하여 위험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래프팅기구의 승선정원이 4명 이하인 경우
-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래프팅가이드 1명이 근접운항하면서 운항할 수 있는 래프팅기구의 수는 운항수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2대부터 5대까지의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 ⑥ 법 제44조제1항제6호에 따라 배치하는 비상구조선(수상레저사업장과 그 영업구역의 순시 및 인명구조를 위하여 사용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인명구조에 적합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하며, 비상구조선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제27조(위험물의 범위) 법 제4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인화물질 등의 위험물”이란 「선박안전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위험물을 말한다.

제28조(영업의 제한 대상이 되는 수상레저기구)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이용자의 신체가 직접 수면에 닿는 수상레저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레저기구”란 스쿠터, 수상스키, 파라세일, 서프보드 등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의 신체가 활동 과정에서 수면에 닿게 되는 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제29조(자료 제출)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7조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과 관련된 서류

제6장 보험

제30조(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보험등의 가입)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

1. 가입기간: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
2. 가입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할 것

제31조(수상레저사업자의 보험등의 가입) 수상레저사업자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등에 가입해야 한다.

1. 가입기간: 수상레저사업자의 사업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
2.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수상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수상레저기구 이용자를 피보험자나 피공제자로 할 것
3. 가입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할 것

제32조(보험등의 가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 수상레저사업자는 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1. 보험등의 가입기간
2. 가입한 보험등의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3. 보험등의 가입금액

제33조(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운영)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이하 “가입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관리 및 개선
2. 보험등의 가입 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보급 및 운영
3. 가입관리전산망의 운영을 위한 컴퓨터·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4. 그 밖에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업무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가입관리전산망 운영지침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법 제52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법 제49조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과 관련한 정보 및 변동 내용을 말한다.<신설 2025. 6. 2.>

제7장 보칙

제3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3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36조(권한의 위임)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59조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권한을 위임한다.

1. 지방해양경찰청장: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지도·감독
2. 해양경찰서장: 다음 각 목의 권한
 - 가. 법 제12조에 따른 면허증의 갱신
 - 나. 법 제15조에 따른 면허증의 발급 및 재발급
 -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종면허의 취소 및 효력 정지

제3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해양경찰청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종면허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면허증의 갱신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면허증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종면허의 취소 및 효력 정지에 관한 사무
6. 법 제36조에 따른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7.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8.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갱신등록에 관한 사무
9. 법 제39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10.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재개업의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
11. 법 제48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무

② 해양경찰청장(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5. 6.

2.>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상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무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종사자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무
3.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4.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5.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보험등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무

③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 또는 「보험업법」 제11장제1절의 보험협회 등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험등의 가입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8조(규제의 재검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2조 및 별표 6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
2. 제16조 및 별표 8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
3. 제18조 및 별표 10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
4. 제20조 및 별표 11에 따른 운항방법 및 기구의 속도 등에 관한 준수사항

제8장 벌칙

제39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부칙 <제33518호, 2023. 6.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이저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수상안전교육이 면제되는 교육의 이수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수상레이저안전법」 제6조에 따라 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하거나,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면허증 갱신을 신청한 사람의 수상안전교육이 면제되는 교육의 이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수상레이저안전법 시행령」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

제4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장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이저안전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및 별표 3에 따라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2023년 11월 30일까지 별표 5 제2호다목부터 아목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시험대행기관의 장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이저안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2023년 11월 30일까지 별표 9 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6조(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이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 10의2에 따라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제26조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7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수상레이저안전법 시행령」 제38조의4제2항 및 별표 10의3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부과처분(업무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은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8조(시험장별 책임운영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3379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3년 12월 17일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379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시험대행기관에 배치된 책임운영자는 제17조제1항제2호 및 별표 9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책임운영자로 본다.

제9조(면허시험이 면제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의 인적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274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4년 3월 24일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274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별표 3 제1호가목1)다)에 따른 인적 기준을 갖추어 면허시험이 면제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5274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3 제1호가목1)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가목1)다)에 따른다.

제10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6제1항제6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를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다목1)나) 중 “같은 법 제4조제2항제1호”를 “같은 법 제5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목 1)다) 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를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로,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제2항제2호”를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목 1)라)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제2항제1호”를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②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8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 및 제44조”를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로 한다.

③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제2항제1호”를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④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3항”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종> 제133호 중 “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 ”를 “ 「수상레저안전법」 제 37조 ”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152호, 2024. 1. 16.>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라목의 출제 범위란 4) 및 같은 표 제2호라목의 출제 범위란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해사안전기본법」 및 「해상교통안전법」

⑥ 및 ⑦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5586호, 2025. 6. 2.>

이 영은 2025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1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별표 14 제2호자목의2부터 자목의4까지의 개정규정: 2025년 6월 21일

부칙 <제35916호, 2025. 12.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명구조요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제2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 1]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제6조제2항 관련)

| 통보기관의 장 | 개인정보의 내용 |
|-------------------------------------|--|
|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되거나 마약류 중독으로 의료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 중인 사람에 대한 자료 |
| 2. 병무청장 | 「병역법」 제14조에 따라 정신질환으로 병역이 면제된 사람에 대한 자료 |
| 3.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 군 재직 중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신질환으로 전역 조치된 사람에 대한 자료 |
| 4.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 가.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정신질환으로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치료 중인 사람으로서 입원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에 대한 자료
나.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정신질환으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 의하여 입원·치료 중인 사람에 대한 자료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1. 16.>

필기시험 과목(제8조제1항 관련)

1. 일반조종면허

| 과목 | 출제 범위 | 과목별
배점 |
|----------------------|--|-----------|
| 가. 수상레저안전 | 1) 수상환경(조석 및 해류)
2) 기상학 기초(주의보·경보 등의 기상통보 및 일기도 읽기)
3) 구급법(생존술·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4) 각종 사고 시 대처방법
5) 안전장비 및 인명구조 | 20점 |
| 나. 수상레저기구
운항 및 운용 | 1) 운항 계기
2) 수상레저기구 조종술
3) 신호음향 및 조난
4) 모터보트·견인기구·수상오토바이의 원리 및 운용 | 20점 |
| 다. 기관 | 1) 내연기관 및 추진장치의 구조
2) 기구의 정비 및 취급방법
3) 기구의 연료유·윤활유·냉각수 계통 관리 | 10점 |
| 라. 법규 | 1) 「수상레저안전법」
2)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4) 「해사안전기본법」 및 「해상교통안전법」
5) 「해양환경관리법」
6) 「전파법」 | 50점 |

2. 요트조종면허

| 과목 | 출제 범위 | 과목별
배점 |
|------------|---|-----------|
| 가. 요트활동 개요 | 1) 해양학 기초(조석·해류 및 파랑의 이해)
2) 해양기상학 기초(해양기상의 특성, 기상통보 및 일기도 읽기) | 10점 |
| 나. 요트 | 1) 선체와 의장
2) 돛[범장(帆裝)]과 기관
3) 전기시설 및 설비
4) 항해장비, 안전장비 및 인명구조
5) 생존술 | 20점 |
| 다. 항해 및 범주 | 1) 항해계획과 항해(항해정보, 각종 항법)
2) 범주 및 피항(避航)
3) 식량과 조리·위생 | 20점 |
| 라. 법규 | 1) 「수상레저안전법」 | 50점 |

| | | |
|--|--|--|
| | 2)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4) 「해사안전기본법」 및 「해상교통안전법」
5) 「해양환경관리법」
6) 「전파법」 | |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 3]

실기시험용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규격(제9조제4항 관련)

1. 일반조종면허 실기시험용 동력수상레저기구

| 구분 | 세부 규격 |
|------------|---|
| 가. 선체 | 빗물이나 햇빛을 차단할 수 있도록 조종석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을 것 |
| 나. 길이 | 5미터 이상 |
| 다. 전폭 | 2미터 이상 |
| 라. 최대출력 | 100마력 이상 |
| 마. 최대속도 | 30노트 이상 |
| 바. 탑승인원 | 4인승 이상 |
| 사. 기관 | 제한 없음 |
| 아. 그 밖의 장비 | 나침반(지름 10cm 이상) 1개, 속도계(MPH) 1개, 회전속도계(RPM GAUGE) 1개, 예비용 노, 소화기 및 자동 정지줄 |

2. 요트조종면허 실기시험용 세일링요트

| 구분 | 세부 규격 |
|---------|-----------|
| 가. 길이 | 약 10미터 이상 |
| 나. 전폭 | 제한 없음 |
| 다. 최대출력 | 15마력 이상 |
| 라. 최대속도 | 제한 없음 |
| 마. 탑승인원 | 6인승 이상 |
| 바. 기관 | 제한 없음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 4]

면허시험 과목의 면제 기준(제10조제4항 관련)

| 면제 대상자 | 면제되는 면허시험 과목 | |
|--------------------------------|----------------------|--------------------------|
| | 조종면허의 종류 | 면허시험 과목 |
| 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제2급 조종면허
및 요트조종면허 | 실기시험
과목의 전부 |
| 나.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제2급 조종면허
및 요트조종면허 | 필기시험
과목의 전부 |
| 다. 법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 제2급 조종면허 | 필기시험
과목의 전부 |
| 라.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제2급 조종면허 | 실기시험
과목의 전부 |
| 마.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제2급 조종면허
및 요트조종면허 |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과목의 전부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 5]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인적기준·장비기준 및 시설기준(제11조제1항제2호 관련)

1. 인적기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둘 것

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책임운영자 1명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 1명 이상

- 1) 제1급 조종면허와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제2급 조종면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2) 요트조종면허와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요트조종면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상레저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상레저분야를 3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 5) 시험대행기관에서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책임운영자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 1명 이상

- 1)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3급 이상의 항해사, 3급 이상의 기관사 또는 3급 이상의 운항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
- 2) 군·경찰 또는 소방관서에서 수상안전관리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법령에 따라 설치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수상안전관리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4) 시험대행기관에서 별표 9 제1호나목에 따른 시험관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5)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에서 강사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장비기준: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추 것

가. 제9조제4항 및 별표 3에 따른 규격에 적합한 실기시험용 동력수상레저기구 1대 이상

나. 비상구조선 1대 이상. 이 경우 비상구조선의 시속은 20노트 이상이며, 승선정원은 4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 구명조끼 20개 이상

라. 구명부환 5개 이상

마. 소화기 3개 이상

바. 예비용 노 3개 이상

사. 조난신호장비(자기점화등, 신호홍염) 및 구급용 장비(비상의약품, 들것)

아. 인명구조교육용 상반신형 마네킨 1개 이상

3. 시설기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모두 갖추는 것

가. 이론교육장: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고, 5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을 것

나. 실기교육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계류장과 교육생을 위한 대기시설을 갖추는 것

다. 행정실: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일 것

라. 주차장: 승용차 10대 이상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일 것

마. 그 밖의 편의시설: 교육생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 및 화장실. 이 경우 화장실은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되어 있을 것

비고

1. 임대차 계약 등을 통해 장비 및 시설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그 사실을 서류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동안 해당 장비 및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이론교육장 및 실기교육장에는 해당 교육생의 교육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의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 6]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그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 |
|------|-----------|---------|----|----|----|
| | | 1차 | 2차 | 3차 | 4차 |
| 법제처 | 33 | | | | |

| | | 위반 | 위반 | 위반 |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0조
제1항제1호 | 지정
취소 | | | |
| 나.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 해양경찰청장에게 교육 이수 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면허시험 과목의 전부를 면제하게 한 경우 | 법 제10조
제1항제2호 | 업무
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 |
| 다.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10조
제1항제3호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 라.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10조
제1항제4호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 7]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인적기준·시설기준 및 장비기준(제15조제1항제3호 관련)

1. 인적기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강사 2명 이상을 둘 것
2. 시설 및 장비기준: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추어 것
 - 가. 교육장: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일 것
 - 나. 행정실: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일 것
 - 다. 화장실: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되어 있을 것
 - 라. 주차장: 승용차 10대 이상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일 것
 - 마. 마이크, 컴퓨터, 빔 프로젝터 또는 스크린 등 시청각 교육을 위한 장비

비고: 임대차 계약 등을 통해 시설 및 장비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그 사실을 서류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동안 해당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 8]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제1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그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
| 법제처 | 39 | | | | |

| | | | | |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 받은 경우 | 법 제14조 제1항제1호 | 지정 취소 | | | |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교육 수료에 관한 증서를 발급한 경우 | 법 제14조 제1항제2호 | 업무 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 |
| 다.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14조 제1항제3호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 9]

시험대행기관의 시험장별 인적기준·장비기준 및 시설기준(제17조제1항제2호 관련)

1. 인적기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둘 것

- 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책임운영자 1명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관 4명 이상
 - 1) 제1급 조종면허와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일반조종면허시험을 대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2) 요트조종면허와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요트조종면허시험을 대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장비기준: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추어 것

- 가. 제9조제4항 및 별표 3에 따른 규격에 적합한 실기시험용 동력수상레저기구 3대 이상. 다만, 별표 3 제2호에 따른 요트조종면허 실기시험용 세일링요트의 경우에는 2대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 나. 비상구조선 1대 이상. 이 경우 비상구조선의 시속은 20노트 이상이며, 승선정원은 4명 이상이어야 한다.
- 다. 구명조끼 20개 이상
- 라. 구명부환 5개 이상
- 마. 소화기 3개 이상
- 바. 예비용 노 3개 이상
- 사. 조난신호장비(자기점화등, 신호홍염) 및 구급용 장비(비상의약품, 들것)
- 아. 인명구조교육용 상반신형 마네킹 1개 이상

3. 시설기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모두 갖추어 것

- 가. 안전교육장: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고, 5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을 것
- 나. 실기시험장: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 것
 - 1) 제9조제3항에 따른 실기시험의 운항코스과 유사한 모양 및 구조를 갖춘 운항코스를 갖추어 것
 - 2)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계류장과 교육생을 위한 대기시설을 갖추어 것

- 다. 행정실: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일 것
- 라. 감독실: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일 것
- 마. 주차장: 승용차 10대 이상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일 것

- 바. 그 밖의 편의시설: 응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 및 화장실. 이 경우 화장

실은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되어 있을 것

비고: 임대차 계약 등을 통해 장비 및 시설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그 사실을 서류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동안 해당 장비 및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 10]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제1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그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
| 법제처 | 47 | | | | |

| | | | | |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대행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8조 제2항제1호 | 지정 취소 | | | |
| 나. 시험대행기관의 장, 책임운영자 또는 종사자가 면허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지시 또는 묵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 법 제18조 제2항제2호 | 지정 취소 | | | |
| 다.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시험대행기관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18조 제2항제3호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 라. 법 또는 법에 따른 면허시험대행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법 제18조 제2항제4호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 수상레이저안전법 시행령 [별표 11] <개정 2025. 6. 2.>

운항방법 및 기구의 속도 등에 관한 준수사항(제20조제1항 관련)

1. 운항방법에 관한 사항

- 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수상레이저기구 또는 선박(이하 이 별표에서 “수상레이저기구등”이라 한다)과의 충돌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과 그 밖에 당시의 상황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해야 한다.
- 나. 다른 수상레이저기구등과 정면으로 충돌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음성신호·수신호 등 적절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이를 알리고 우현(뱃머리를 향하여 오른쪽에 있는 뱃전) 쪽으로 진로를 피해야 한다.
- 다. 다른 수상레이저기구등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수상레이저기구등을 오른쪽에 두고 있는 수상레이저기구가 진로를 피해야 한다.
- 라. 다른 수상레이저기구등과 같은 방향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2미터 이내로 근접하여 운항해서는 안 된다.
- 마. 다른 수상레이저기구등을 앞지르기하려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당하는 수상레이저기구등을 완전히 앞지르기하거나 그 수상레이저기구등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수상레이저기구등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 바.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수상레이저기구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수상레이저기구의 소음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굉음을 발생시켜 놀라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수상레이저기구의 속도 등에 관한 사항

- 가. 방파제·다이빙대·계류장 및 교량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구역이나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위험구역에서는 10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해야 하며,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운항지침을 따라야 한다.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부터 15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는 인위적으로 파도를 발생시키는 특수장치가 설치된 동력수상레이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된다. 다만, 동력수상레이저기구에 설치된 특수장치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파도를 발생시키지 않고 5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계류장

- 2)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 등 수상에 띄우는 수상레이저기구 및 설비가 설치된 곳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 12] <개정 2025. 12. 16.>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26조제1항제2호 관련)

1. 설립목적 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일 것
가. 수상에서의 인명구조 또는 인명구조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나. 수상레저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2. 인력기준: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 자격을 갖춘 강사 5명 이상을 둘 것
3. 시설기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모두 갖추는 것
가. 강의실: 면적이 65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수영장: 길이가 20미터 이상이고, 최저수심이 1미터 이상이며, 5개 이상의 레인을 갖추고 있을 것
4. 장비기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 장비를 갖추는 것

비고: 임대차 계약 등을 통해 시설 및 장비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그 사실을 서류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동안 해당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 13]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별표 6·별표 8 또는 별표 10에 따른 처분기준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별표 6·별표 8 또는 별표 10에 따른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합산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갈음하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징금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별표 6·별표 8 또는 별표 10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징금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채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징금(단위: 만원)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 해양경찰청장에게 교육 이수 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면허시험 과목의 전부를 면제하게 한 경우 | 법 제10조 제1항제2호 | 1,000 | | |
| 나.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10조 제1항제3호 | 200 | 600 | 1,000 |
| 다.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10조 제1항제4호 | 200 | 600 | 1,000 |
| 라. 안전교육 위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교육 수수료에 관한 증서를 발급한 경우 | 법 제14조 제1항제2호 | 1,000 | | |
| 마. 안전교육 위탁기관이 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14조 제1항제3호 | 200 | 600 | 1,000 |
| 바. 시험대행기관이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18조 제2항제3호 | 200 | 600 | 1,000 |
| 사. 시험대행기관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면허시험 대행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법 제18조 제2항제4호 | 200 | 600 | 1,000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 14] <개정 2025. 6.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채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단위: 만원) |
|--|---------------|-------------|
| 가.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 제2항제1호 | 20 |
| 나.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에서 시험·교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교육을 | 법 제64조 제1항제1호 | 100 |

| | | | | |
|---|------------------|-------|-------|----------|
| 받지 않은 경우 | | | | |
| 다.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인명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 제2항제2호 | 10 | | |
| 라.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운항규칙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 제2항제3호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 | 20 | 30 | 50 |
| 마.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기상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이 제한되는 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경우 | 법 제64조 제2항제4호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 | 20 | 30 | 50 |
| 바.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 제2항제5호 | 20 | | |
| 사.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로 출발함으로써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경우 | 법 제64조 제2항제6호 | 20 | | |
| 아.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고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 제2항제7호 | 20 | | |
| 자.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시간 외에 수상레저활동을 한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2호 | 60 | | |
| 자의2.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 | 법 제64조 제1항 제2호의2 | 100 | | |
| 자의3.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 제1항 제2호의3 | 100 | | |
| 자의4. 법 제28조를 위반하여 약물복용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 | 법 제64조 제1항 제2호의4 | 100 | | |

| | | | | |
|---|----------------|---|-------|----------|
| 차.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정원을 초과하여 사람을 태우고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3호 | 60 | | |
| 카.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4호 | 60 | | |
| 타. 법 제3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 제2항제8호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 | 20 | 30 | 50 |
| 파. 법 제32조에 따른 일시정지나 면허증·신분증의 제시명령을 거부한 경우 | 법 제64조 제2항제9호 | 20 | | |
| 하. 수상레저사업자가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5호 | | | |
| 1)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10 | | |
| 2) 재개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100 | | |
| 거. 수상레저사업자가 법 제42조에 따라 신고한 이용요금 외의 금품을 받거나 신고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6호 | 60 | | |
| 너.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법 제45조에 따른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7호 | 100 | | |
| 더. 수상레저사업자가 법 제47조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8호 | 100 | | |
| 러.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가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 제2항제10호 | 1) 위반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1만원
2) 위반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위반일수에 1만원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부과금액은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

| | | |
|---|----------------|---|
| 며. 수상레저사업자가 법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9호 | 100 |
| 버. 수상레저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50조를 위반하여 보험등의 가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의 정보를 알린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10호 | 50 |
| 서.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가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11호 | 통지하지 않은 건수 1건당 1만원. 이 경우 부과금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13.] [해양수산부령 제808호, 2026. 7. 13.,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법령) 032 - 835 - 2351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조종면허) 032 - 835 - 2552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수상레저시스템) 032 - 835 - 2652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수상레저사업) 032 - 835 - 24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2. 해당 연도 수상레저 안전관리 정책의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
3. 그 밖에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해양경찰청장은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의 수정·보완 또는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조종면허

제3조(외국인에 대한 조종면허의 특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2. 조종기간: 국제경기대회 개최일 10일 전부터 국제경기대회 종료 후 10일까지
3. 조종지역: 국내 수역
4. 국제경기대회의 종류 및 규모: 2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국제경기대회

제4조(조종면허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방법) 영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조종면허 결격사유 통보대장에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기록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는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5조(면허시험의 공고) 해양경찰청장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이하 “면허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실거나 법 제36조에 따른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이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의 게시판에 게시해야 한다.

1. 면허시험의 일시 및 장소
2. 면허시험 과목
3. 응시자격
4. 제출 서류 및 제출 기한
5. 그 밖에 면허시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및 접수 등)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인 것으로 한다) 1장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14세 미만(제1급 조종면허의 경우 18세 미만)인 사람: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면허시험 면제 대상인 사람: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0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응시자가 외국인이거나 외국국적동포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응시표를 해당 응시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응시표의 유효기간은 해당 응시원서의 접수일부터 1년까지로 하며, 면허시험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 필기시험 합격일부터 1년까지로 한다.

제7조(실기시험의 채점기준 등) ①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실기시험의 채점기준과 운항코스는 별표 1과 같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기시험을 실시할 때 실기시험용 동력수상레저기구 1대에 2명의 시험관을 탑승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기시험의 채점은 제2항에 따라 탑승한 시험관이 별지 제5호서식의 실기시험 채점표에 직접 기록하는 방식으로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면허시험 시험성적표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8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하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11조제1항제2호 및 별표 5에 따른 인적기준·장비기준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시설기준에 관한 도면
2.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교육 실시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 또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이하 “공유수면등”이라 한다)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사본
4.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이나 단체가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한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에 별표 2에 따라 제작된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표지판을 해당 교육기관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교육 운영) ① 법 제9조제3항 및 영 제11조제4항에 따라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 운영해야 하는 교육과목별 교육내용, 교육시간 및 교육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은 해양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0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종사자의 준수사항 및 면허시험 면제자에 대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의 발급절차는 별표 4와 같다.

제11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행정처분 통보)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제12조(면허증의 사전 갱신·갱신 연기 신청서) 영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면허증의 사전 갱신·갱신 연기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13조(수상안전교육의 실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상안전교육의 과목 및 내용 등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이하 “안전교육 위탁기관”이라 한다)은 해양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안전교육 위탁기관은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상안전교육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4조(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15조제1항제3호 및 별표 7에 따른 인적기준·시설기준 및 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시설기준에 관한 도면
2. 별표 5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 실시계획서
3. 정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이나 단체가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안전교육 위탁기관에 별표 2에 따라 제작된 안전교육 위탁기관 표지판을 해당 기관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안전교육 위탁기관의 행정처분 통보)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제16조(면허증의 발급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증을 갱신하려는 사람 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갱신·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면허증(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인 것으로 한다) 1장
3. 수상안전교육 수료증(면허증을 갱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을 발급해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시험에 합격한 날

2.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의 갱신을 신청한 날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면허증을 다시 발급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날
- ③ 해양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장에 해당 면허증 발급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면허증의 발급: 별지 제15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관리대장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면허증의 갱신·재발급: 별지 제16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갱신·재발급 발급대장

제17조(면허 증명서의 발급) ①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해당 면허증의 발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해당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면허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 신청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그 신청 내용과 면허증 발급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8조(조종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기준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종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②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소·정지·경고처분 통지서로 한다. 다만, 면허증 소지자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허시험 응시원서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에 14일간 공고함으로써 그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제19조(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한 범죄의 종류)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살인 또는 강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죄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1. 「국가보안법」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범죄행위
2. 「형법」 등을 위반한 다음 각 목의 범죄행위
 - 가. 살인·사체유기 또는 방화
 - 나. 강도·강간 또는 강제추행
 - 다. 약취·유인 또는 감금
 - 라.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20조(시험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이하 “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17조제1항제2호 및 별표 9에 따른 인적기준·장비기준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시설기준에 관한 도면
 2. 사업계획서
 3. 공유수면등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사본
 4. 정관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이나 단체가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시험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시험대행기관에 별표 2에 따라 제작된 시험대행기관 표지판을 해당 기관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시험대행기관의 행정처분 통보) 법 제18조제2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제22조(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강사(강사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운영자를 포함한다)
2.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강사
3.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시험관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운영자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대상자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교육: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

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교육대상자: 21시간 이상

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교육대상자: 8시간 이상

2. 수시교육: 제1호 외의 교육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교육대상자에게 실시하는 8시간 이하의 교육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정기교육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수시험을 실시하고,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정기교육 이수자로 인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정기교육 및 수시교육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장 안전준수의무

제23조(안전장비의 착용) ①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법 제20조에 따라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영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워터슬레이드를 사용하여 수상레저활동 또는 래프팅을 할 때에는 구명조끼와 함께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명조끼 대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장비를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6. 9.>

1. 영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서프보드 또는 같은 항 제16호에 따른 패들보드를 사용하여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 보드 리쉬(board leash: 서프보드 또는 패들보드와 발목을 연결하여 주는 장비)
2.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을 위해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구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잠수복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상레저활동의 형태,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및 날씨 등을 고려하여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이 착용해야 하는 구명조끼·구명복 또는 안전모 등의 인명안전장비의 종류를 특정하여 착용 등의 지시를 할 수 있다.<개정 2025. 6. 9.>
- ③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시를 할 때에는 사람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개정 2025. 6. 9.>

제24조(운항구역 준수의 예외 등) ① 영 제20조제2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機關)”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남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남시어선으로 쓰였던 어선의 기관은 제외한다.

1.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에 사용되었던 기관
2. 「수산업법」 제27조제3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승인받은 어선에 사용되었던 기관
3.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에 사용되었던 기관
- ②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운항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제25조(기상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제한의 예외) 영 제21조에 따른 기상특보활동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제26조(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①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서를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제출(팩스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2항 단서에서 “안전관리 선박의 동행, 선단의 구성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연해구역, 근해구역 또는 원양구역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와 500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동행하여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
2.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기기를 갖춘 수상레저기구 2대 이상으로 선단(船團)을 구성하여 선단 내의 수상레저기구 간에 500미터(무동력수상레저기구 간에는 200미터를 말한다) 이내의 거리를 유지하며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

제27조(사고의 신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고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화·팩스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신고해야 한다.

1.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가 발생한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3. 사고자 및 조종자의 인적사항
4. 피해상황 및 조치사항

제28조(무면허조종이 허용되는 경우) ① 법 제25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급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가진 사람이 동시에 감독하는 수상레저기구가 3대 이하인 경우
2. 해당 수상레저기구가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견인하고 있지 않은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면허시험을 위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 나.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수상레저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장 안에서 탑승 정원이 4명 이하인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이용객을 탑승시켜 조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 라. 수상레저활동 관련 단체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가 실시하는 비영리 목적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② 법 제25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급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를 가진 사람과 함께 탑승하여 조종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면허를 가진 사람이 법 제27조 또는 제28조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복용 상태에서 탑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9조(야간 운항장비) ①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야간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운항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세부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1. 항해등
2. 전등
3. 야간 조난신호장비
4. 등(燈)이 부착된 구명조끼
5. 통신기기
6. 구명부환
7. 소화기
8. 자기점화등
9. 나침반
10. 위성항법장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면의 넓이, 물의 깊이, 유속(流速) 등을 고려하여 야간 운항을 하는 데에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운항장비 중 일부를 갖추지 않게 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야간 운항장비의 일부를 갖추지 않게 한 경우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제30조(야간 수상레저활동시간의 조정) 해양경찰서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해가 진 후 30분부터 24시까지의 범위에서 야간 수상레저활동의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제4장 안전관리

제31조(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조종면허에 관한 업무
2. 법 제17조에 따른 조종면허의 취소 및 효력 정지에 관한 업무
3. 법 제19조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안전교육 위탁기관 또는 시험대행기관의 종사자 교육에 관한 업무
4.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에 관한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업무
5.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하 “수상레저기구등록법”이라 한다) 제2장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현황 관리에 관한 업무
6.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안전검사증 및 안전검사필증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업무
7.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원의 교육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장 수상레저사업

제32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을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이하 “수상레저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표 8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표 8 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구역에 관한 도면
2. 별표 8 제1호나목에 따른 시설기준 명세서
3. 별표 8 제1호다목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자와 종사자의 명단 및 해당 면허증 사본(면허증 사본의 경우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별표 8 제1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 명세서
5. 별표 8 제1호사목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의 명단과 해당 자격증 사본
6. 공유수면등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사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육상에서 보관하는 영 제2조제2항제8호·제11호·제13호 또는 제16호에 따른 서프보드·윈드서핑·카이트보드 또는 패들보드를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수상레저사업(빌린 사람이 빌린 수상레저기구를 직접 가져가거나 이동시키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표 8 제2호가목에 따른 시설기준 명세서
2. 별표 8 제2호나목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명세서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주민등록표 초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⑤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제1항 및 별표 8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2. 법 제3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 ⑦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사업장과 영업구역의 물의 깊이, 유속, 운항거리 및 영업형태 등을 고려할 때 위험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8에서 정하는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3조(수상레저사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등록 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주민등록표 초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③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을 새로 발급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등록증에 그 변경사항을 적어 발급해야 한다.

제34조(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갱신) 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한 자에게 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갱신절차와 갱신신청 기간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해당 수상레저사업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5일 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 등록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2. 수상레저사업 등록 신청 시 제출한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서류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된 서류

③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갱신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갱신하고, 신청인에게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을 다시 발급해야 한다.

제35조(휴업 등의 신고)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 휴업·폐업 신고서에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휴업 또는 폐업하기 3일 전까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④ 수상레저사업자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을 다시 개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 재개업 신고서에 제32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시 개업하기 7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재개업 신고의 수리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3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은 “신고”로, “등록신청”은 “재개업 신고”로, “등록”은 “재개업 신고 수리”로 본다.

제36조(이용요금의 신고) 법 제42조에 따라 탑승료·대여료 등의 이용요금을 신고하거나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이용요금 신고·변경신고서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7조(정비 및 원상복구의 명령) ① 법 제4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정비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수상레저사업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 이행계획서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사용정지를 명령할 때 별지 제32호서식의 사용정지명령서로 하고, 사용정지 대상인 수상레저기구의 앞면·뒷면·왼쪽면 또는 오른쪽면의 잘 보이는 곳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상레저기구 사용정지표 2개를 붙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사용정지 명령을 받은 수상레저사업자는 수상레저기구 사용정지표를 훼손하거나 그 부착 위치를 변경해서는 안 되며,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기 전까지는 이를 임의로 제거해서는 안 된다.

제38조(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제6조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수상레저기구를 운영하는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법 제45조에 따라 별표 9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39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의 기준) 법 제48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5장의2 보험 <신설 2025. 6. 9.>

제39조의2(보험등 계약의 체결 사실 등의 통지) ① 법 제5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10의2와 같다.

②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알릴 때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이하 “가입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가입관리전산망의 장애 등으로 가입관리전산망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보험회사등이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등록 전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규검사의 안전검사증 번호를 말한다)
2. 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를 말한다)
3. 보험등 계약기간(법 제53조제1항제1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보험등 가입의무자에게 보험등 가입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5. 6. 9.]

제39조의3(보험등 가입 여부의 확인)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보험등 가입의무자가 보험등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할 때에는 가입관리전산망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시하는 보험등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보험등 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해당 보험등 계약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파일이 생성되지 않은 경우
2. 가입관리전산망의 장애 등으로 가입관리전산망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본조신설 2025. 6. 9.]

제6장 보칙

제40조(수수료)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1과 같다.

②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이 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밝히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③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은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해야 하며,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했을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서면으로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승인한 수수료를 관보에 고시하고,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은 그 승인된 내용과 실비 산정명세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41조(수수료의 반환기준) 법 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면허시험을 응시하거나 수상안전교육을 받기 위하여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해양경찰청 또는 시험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면허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3. 면허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일 하루 전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4. 면허시험의 실기시험 시행일 2일 전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제42조(규제의 재검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2조에 따른 종사자에 대한 교육: 2023년 1월 1일
2. 제26조제2항에 따른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허용기준: 2022년 1월 1일
3. 제28조에 따른 무면허조종이 허용되는 경우: 2023년 1월 1일
4. 제32조제1항 및 별표 8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 2023년 1월 1일
5. 제38조 및 별표 9에 따른 등록 대상이 아닌 수레저기구 운영사업자와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 2022년 1월 1일
6. 제39조 및 별표 10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기준: 2022년 1월 1일

부칙 <제613호, 2023. 7.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별표 1의3, 별표 1의4 및 별표 4에 따른다.

제4조(수상레저사업 장비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 및 별표 10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한 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 제1호바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규격의 비상구조선 깃발을 갖춰야 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6개월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1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3항”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②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3호가목1)(가)·(나) 외의 부분 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③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 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④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자격증(0.5)의 구분란 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로,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를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51호, 2024. 2. 5.>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가목의 세부 내용란 4) 및 같은 표 제2호가목의 세부 내용란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해사안전기본법」 및 「해상교통안전법」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739호, 2025. 6.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8호, 2026. 7.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시험 과목의 전부를 면제하는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이 진행 중인 경우의 교육 세부 내용에 관하여는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수상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상안전교육이 진행 중인 경우의 교육 과목·내용 및 시간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

실기시험의 채점기준과 운항코스(제7조제1항 관련)

1. 일반조종면허 실기시험

가. 채점기준

| 과제 | 항목 | 세부 내용 | 감점 | 채점방법 |
|-----------------|---------------|--|----|---|
| 1) 출발 전 점검 및 확인 | 가) 구명조끼 착용 불량 |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경우(구명조끼 착용 불량) | 3 | 출발 전 점검 시 구명조끼 착용상태를 기준으로 1회만 채점한다. |
| | 나) 점검의 불이행 | 출발 전 점검사항(구명부환, 소화기, 예비용 노, 엔진, 연료, 배터리, 핸들, 속도 전환 레버, 계기판, 자동정지 줄)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점검사항 누락) | 3 | (1) 점검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1회만 채점한다.
(2) 확인사항을 행동이나 말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채점한다. 다만, 신체적 장애 등으로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에는 말로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
| 2) 출발 | 가) 시동 요령 부족 | 속도전환 레버를 중립에 두지 않고 시동을 걸거나 엔진의 시동상태에서 시동키를 돌리거나 시동이 걸린 후에도 시동키를 2초 이상 돌린 경우(시동 불량) | 2 |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1회만 채점한다. |
| | 나) 이안(離岸) 불량 | (1) 계류줄을 건지 않고 출발한 경우(계류줄 묶임)
(2) 출발 시 시험선의 선체가 계류장 또는 다른 물체와 부딪치거나 접촉한 | 2 | 각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1회만 채점한다. |

| | | | |
|--------------------------|---|---|---|
| | 경우(출발 시 선체 접촉) | | |
| 다) 출발시간 지연 | 출발 지시 후 3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경우(30초 이상 출발 지연) | 3 | (1)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1회만 채점한다.
(2) 다른 항목의 세부 내용으로 인하여 출발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하며, 병행 채점한다.
(3) 출발하지 못한 사유가 시험선 고장 등 조종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
| 라) 속도전환 레버 등 조작 불량 | (1) 속도전환 레버를 급히 조작하거나 급히 출발한 경우(급조작·급출발)
(2) 속도전환 레버 조작 불량으로 클러치 마찰음이 발생하거나 엔진이 정지된 경우(레버 마찰음 발생 또는 엔진정지)
(3) 지시받지 않고 엔진 트림(trim) 조절 스위치를 조작한 경우(트림 스위치 작동) | 2 | (가) 각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1회만 채점한다.
(나) 탑승자의 신체 일부가 찢히지거나 엔진의 회전소리가 갑자기 높아지는 경우에도 급출발로 채점한다. |
| 마) 안전 미확인 | (1) 자동정지 줄을 착용하지 않고 출발한 경우(자동정지 줄 미착용)
(2) 앞·뒤·왼쪽·오른쪽의 안전상태를 확인하지 않거나 탑승자가 앉기 전에 출발한 경우(안전 미확인·앉기 전 출발) | 3 | (가) 각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1회만 채점한다.
(나) 고개를 돌려서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말로 이상 없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채점한다. |
| 바) 출발 침로(針路)유지 불량
법제처 | (1) 출발 후 15초 이내에 지시된 방향의 $\pm 10^\circ$ 이내의 침로를 유지하지 못한 | 3 | 각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1회만 채점한다. |

| | | | | |
|-----------|-----------------|--|---|--|
| | | 경우(15초 이내 출발 침로 $\pm 10^\circ$ 이내 유지 불량)
(2) 출발 후 일직선으로 운항하지 못하고 침로가 $\pm 10^\circ$ 이상 좌우로 불안정하게 변한 경우(출발 침로 $\pm 10^\circ$ 이상 불안정) | | |
| 3) 변침(變針) | 가) 변침 불량 | (1) 제한시간 내($45^\circ \cdot 90^\circ$ 이외의 변침은 15초, 180° 이외의 변침은 20초)에 지시된 침로의 $\pm 10^\circ$ 이내로 변침하지 못한 경우(지시 각도 $\pm 10^\circ$ 초과)
(2) 변침 완료 후 침로가 $\pm 10^\circ$ 이내에서 유지되지 않은 경우($\pm 10^\circ$ 이내 침로 유지 불량) | 3 | (가) 각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2회까지 채점할 수 있다.
(나) 변침은 좌현·우현을 달리하여 3회 실시하고, 변침 범위는 $45^\circ \cdot 90^\circ$ 및 180° 내외로 각 1회 실시해야 하며, 나침반으로 변침 방위를 평가한다.
(다) 변침 후 10초 이상 침로를 유지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 | 나) 안전확인 및 선체 동요 | (1) 변침 전 변침방향의 안전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말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변침 전 안전상태)
(2) 변침 시 선체의 심한 동요나 급경사가 발생한 경우(선체 동요)
(3) 변침 시 10노트 이상 15노트 이내의 속력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변침속력) | 2 | 각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2회까지 채점할 수 있다. |
| 4) 운항 | 가) 조종자세 불량 | (1) 핸들을 정면으로 하여 조종하지 않거나 창틀에 팔꿈치를 올려놓고 조종 | 2 | (가) 각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1회만 채점한다. |

| | | | | |
|-----------|--------------|---|---|---|
| | | <p>한 경우(핸들의 비정면, 창틀 팔)</p> <p>(2) 시험관의 조종자세 교정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교정 지시 불응)</p> <p>(3) 한 손으로만 계속 핸들을 조작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조종한 경우(한 손 조종, 서서 조종)</p> <p>(4) 특별한 사유 없이 속도를 조절하는 등 불필요하게 속도전환 레버를 반복 조작한 경우(불필요한 레버 조작)</p> | | (나) 신체적 장애 등의 특별한 사유로 이 항목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점하지 않는다. |
| | 나) 지정속력유지 불량 | <p>(1) 증속 및 활주(滑走) 지시 후 15초 이내에 활주 상태가 되지 않은 경우(활주시간 15초 초과)</p> <p>(2) 시험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활주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활주 상태 유지 불량)</p> <p>(3) 15노트 이하 또는 25노트 이상으로 운항한 경우(저속 또는 과속)</p> | 4 | <p>(가) 각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2회까지 채점할 수 있다.</p> <p>(나) 시험관은 세부 내용에 대하여 1회 채점 시 시정 지시를 해야 하며, 시정 지시 후에도 시정하지 않거나 다시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2회 채점한다.</p> |
| 5) 사행(蛇行) | 가) 반대방향진행 | 첫 번째 부표(buoy)로부터 시계방향으로 진행하지 않고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경우(반대방향 진행) | 3 | <p>(1)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1회만 채점한다.</p> <p>(2)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는 경우라도 과제 5)의 다른 항목은 정상적인 사행으로 보고 채점한다.</p> |
| | 나) 통과간격 불량 | (1) 부표로부터 3미터 이내로 접근한 | 9 | (가) 각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2회까지 채 |

| | | | | |
|-------------|-------------|---|---|--|
| | | 경우(부표 3미터 접근)
(2) 첫 번째 부표 전방 25미터 지점과 세 번째 부표 후방 25미터 지점의 양쪽 옆 각 15미터 지점을 연결한 수역을 벗어난 경우 또는 부표를 사행하지 않은 경우(15미터 초과, 미사행) | | 점할 수 있다.
(나) 부표를 사행하지 않은 경우란 부표를 중심으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반원(타원)형으로 회전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
| | 다) 침로 이탈 | (1) 첫 번째 부표 약 30미터 전방에서 3개의 부표와 일직선으로 침로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사행진입 불량)
(2) 세 번째 부표 사행 후 3개의 부표와 일직선으로 침로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사행 후 침로 불량) | 3 | 각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1회만 채점한다. |
| | 라) 핸들 조작 미숙 | (1) 사행 중에 핸들 조작 미숙으로 선체가 심하게 흔들리거나 선체 후미에 급격한 쓸림이 발생하는 경우(심한 요동, 쓸림)
(2) 사행 중 갑작스런 핸들 조작으로 선회가 부자연스러운 경우(부자연스러운 선회) | 3 | (가) 각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1회만 채점한다.
(나) “선회가 부자연스러운 경우”란 완만한 곡선으로 회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
| 6) 급정지 및 후진 | 가) 급정지 불량 | (1) 급정지 지시 후 3초 이내에 속도전환 레버를 중립으로 조작하지 못한 경우(급정지 3초 초과)
(2) 급정지 시 후진 레버를 사용한 경우(후진 레버 사용) | 4 | 각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1회만 채점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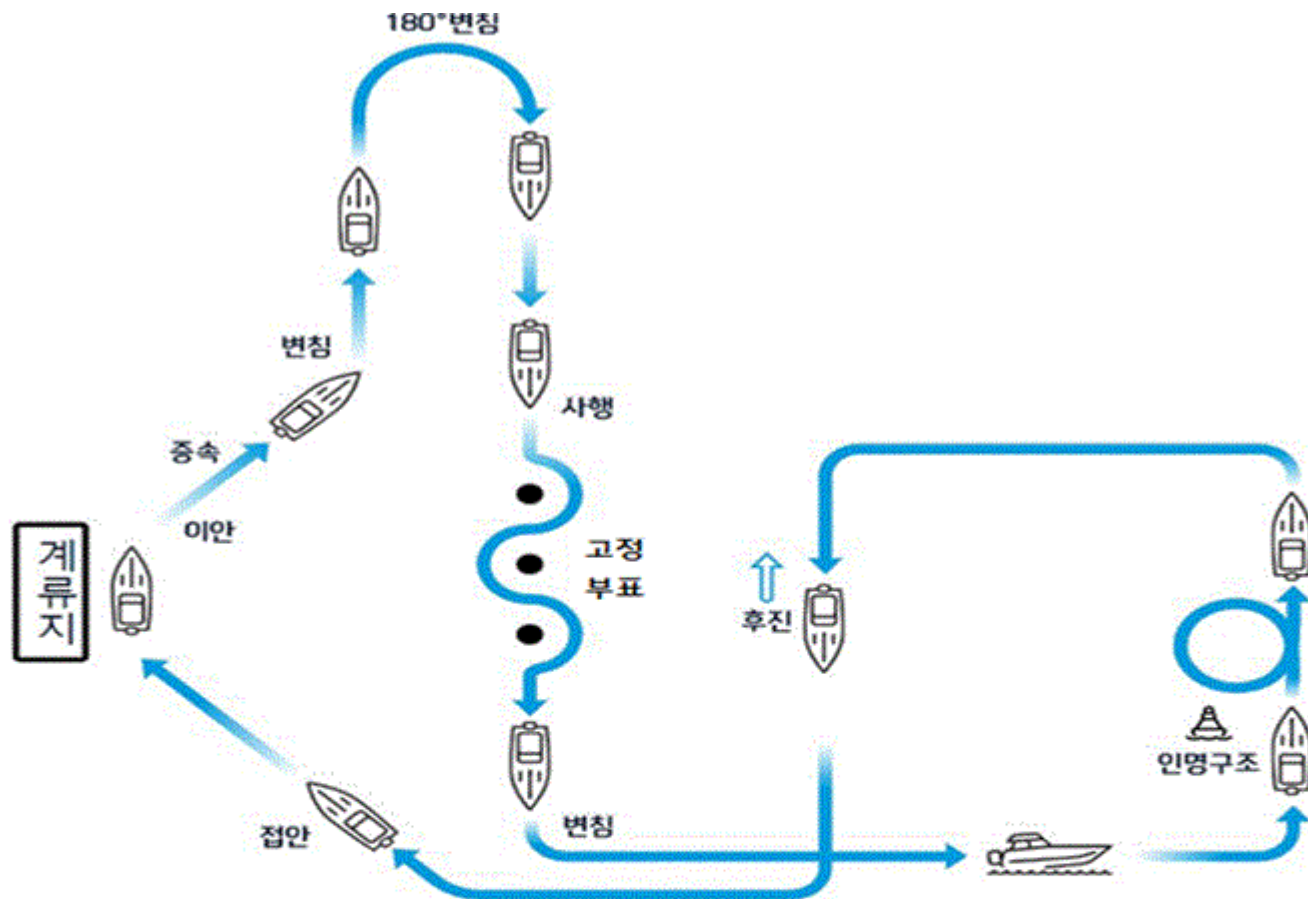
| | | | | |
|---------|---------------------|--|---|--|
| | 나) 후진동작 미숙 | <p>(1) 후진 레버 사용 전 후방의 안전상태를 확인하지 않거나 후진 중 지속적으로 후방의 안전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후진방향 미확인)</p> <p>(2) 후진 시 진행침로가 $\pm 10^\circ$ 이상 벗어난 경우(후진침로 $\pm 10^\circ$ 이상)</p> <p>(3) 후진 레버를 급히 조작하거나 급히 후진한 경우(후진 레버 급조작·급후진)</p> | 2 | <p>(가) 각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1회만 채점한다.</p> <p>(나) 탑승자의 신체 일부가 후진으로 한쪽으로 쏠리거나 엔진 회전소리가 갑자기 높아지는 경우에는 (3)의 세부 내용에 따른 '후진 레버 급조작·급후진'으로 채점한다.</p> <p>(다) 응시자는 시험관의 정지 지시가 있을 경우까지 후진해야 하며, 후진은 후진거리를 고려하여 15초에서 20초 이내로 한다.</p> |
| 7) 인명구조 | 가) 물에 빠진 사람에의 접근 불량 | <p>(1) 물에 빠진 사람이 있음을 고지한 후 3초 이내에 5노트 이하로 속도를 줄이고 물에 빠진 사람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3초 이내 물에 빠진 사람 미확인)</p> <p>(2) 물에 빠진 사람이 있음을 고지한 후 5초 이내에 물에 빠진 사람이 발생한 방향으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5초 이내 물에 빠진 사람 발생방향 미전환)</p> <p>(3) 물에 빠진 사람을 조종석 1미터 이내로 접근시키지 않은 경우(조종석 1미터 이내 접근 불량)</p> | 3 | <p>(가) 각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1회만 채점한다.</p> <p>(나) 물에 빠진 사람의 위치 확인 시 확인 유무를 말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확인으로 채점한다.</p> <p>(다) (3)의 세부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자로 하여금 다시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p> |

| | | | | |
|-----------|------------|---|---|--|
| | 나) 속도조정 불량 | (1) 물에 빠진 사람 방향으로 방향 전환 후 물에 빠진 사람으로부터 15미터 이내에서 3노트 이상의 속도로 접근한 경우(3노트 이상 접근)
(2) 물에 빠진 사람이 시험선의 선체에 근접했을 경우 속도전환 레버를 중립으로 하지 않거나 후진 레버를 사용한 경우(레버 미중립, 후진 레버 사용) | 3 | (가) 각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1회만 채점한다.
(나) 각 세부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자로 하여금 다시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 |
| | 다) 구조실패 | (1) 물에 빠진 사람(부표)과 충돌한 경우(물에 빠진 사람과 충돌)
(2) 물에 빠진 사람이 있음을 고지한 후 2분 이내에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지 못한 경우(2분 이내 구조 실패) | 6 | (가) 각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1회만 채점한다.
(나) 시험선의 방풍막을 기준으로 선수부(船首部)에 물에 빠진 사람이 부딪히는 경우에는 충돌로 채점한다. 다만, 바람·조류·파도 등으로 시험선의 현측(舷側: 배의 양쪽 가장 자리 부분)에 가볍게 접촉하는 경우는 감점하지 않는다. |
| 8) 접안(接岸) | 가) 접근속도 불량 | 계류장으로부터 30미터의 거리에서 속도를 5노트 이하로 낮추어 접근하지 않은 경우, 계류장 접안 위치에서 속도를 3노트 이하로 낮추지 않거나 속도전환 레버가 중립이 아닌 경우(후진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접안속도 초과) | 3 | (1)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1회만 채점한다.
(2) 접안 시 시험관은 정확한 접안 위치를 응시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
| | 나) 접안 불량 | (1) 접안 위치에서 시험선과 계류장이 | 3 | (가) 각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1회만 채점 |

| | | |
|--|---|---|
| | 1미터 이내의 거리로 평행이 되지 않은 경우(평행 상태 불량)
(2) 계류장과 선수(船首) 또는 선미(船尾)가 부딪친 경우(계류장 충돌)
(3) 접안 위치에 접안을 하지 못한 경우(접안 실패) | 한다.
(나) “선수(船首)”란 방풍막을 기준으로 앞쪽 굴곡부를 말한다. |
| <p>9) 실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유로 시험을 중단하고 “실격”으로 처리한다.</p> <p>가) 3회 이상의 출발 지시에도 출발하지 못하거나 응시자가 시험포기의 의사를 밝힌 경우: 3회 이상 출발 불가 및 응시자 시험포기</p> <p>나) 속도전환 레버 및 핸들의 조작 미숙 등 조종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종능력 부족으로 시험진행 곤란</p> <p>다) 부표 등과 충돌하는 등 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 현저한 사고위험</p> <p>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이거나 취한 상태는 아니더라도 음주로 인하여 시험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음주상태</p> <p>마) 사고 예방과 시험 진행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거나 시험관의 지시 없이 2회 이상 임의로 시험을 진행하는 경우: 시험관의 지시·통제 불응 또는 임의 시험 진행</p> <p>바) 이미 감점한 점수의 합계가 합격기준에 미달됨이 명백한 경우: 중간점수 합격기준 미달</p> | | |
| <p>비고</p> <p>1. 제1호가목의 채점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목과 같다.</p> <p>가. “출발”이란 정지된 상태에서 속도전환 레버를 조작하여 전진 또는 후진하는 것을 말한다.</p> <p>나. “이안”이란 계류줄을 걷고 계류장에서 이탈하여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행위를 말한다.</p> <p>다. “변침”이란 모터보트가 침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p> <p>라. “활주”란 모터보트의 속력과 양력(揚力)이 증가되어 선수 및 선미가 수면과 평행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p> <p>마. “사행”이란 50미터 간격으로 설치된 3개의 고정 부표를 각각 좌우로 방향을 달리(첫 번째 부표는 왼쪽부터 회전)하면서 회전하는 것을 말한다.</p> | | |

- 바. “침로”란 모터보트가 진행하는 방향의 나침방위를 말한다.
- 사. “접안”이란 시험선을 계류할 수 있도록 접안 위치에 정지시키는 동작을 말한다.
2. 세부 내용란 중 ()의 내용은 시험관이 채점 과정에서 착오가 없도록 채점표에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사항이다.
 3. 실기시험 진행 중에 감점 사항을 즉시 알리면 응시자를 불안하게 할 수 있으므로 감점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채점표에 표시하고, 실기시험이 끝난 후 응시자가 채점 내용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책임운영자 등이 해당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항목의 채점기준은 실기시험 모든 과정에 적용된다.
 - 가. 제1호가목2)라)에 따른 속도전환 레버 등 조작 불량
 - 나. 제1호가목4)가) 및 나)에 따른 조종자세 불량 및 지정속력유지 불량
 5. 제1호가목2)마)(2)에 해당하는 세부 내용[앞·뒤·왼쪽·오른쪽의 안전상태를 확인하지 않거나 탑승자가 앉기 전에 출발한 경우(안전 미확인·앉기 전 출발)]의 채점기준은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정지한 후 출발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6. 속력은 해당 시험선의 속도계·속력계 또는 RPM게이지를 기준으로 채점하며, RPM을 기준으로 채점할 때에는 출발 전에 응시자에게 기준 RPM을 알려줘야 한다.

나. 운항코스



비고

1. 계류지는 2대 이상의 시험선이 동시에 계류할 수 있어야 하며, 비트(bitt: 시험선을 매어두기 위해 세운 기둥)를 설치해야 한다.
2. 실기시험용 동력수상레저기구에는 인명구조용 부표를 1개씩 비치해야 한다.
3. 사행코스에는 50미터 간격으로 3개의 고정 부표를 설치해야 한다.

2. 요트조종면허 실기시험

가. 채점기준

| 과제 | 항목 | 세부 내용 | 감점 | 채점 방법 |
|-----------------|-------------------|---|----|------------------------------|
| 1) 출발 전 점검 및 확인 | 가) 로프 취급 미숙 | (1) 8자 묶기를 하지 못한 경우(8자 묶기)
(2) 보라인(bowline) 묶기를 하지 못한 경우(bowline 묶기)
(3) 클로브(clove) 묶기를 하지 못한 경우(clove 묶기)
(4) 클리트(cleat) 묶기를 하지 못한 경우(cleat 묶기) | 3 | 각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2회까지 채점할 수 있다. |
| | 나) 구명조끼 착용 불량 |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경우(구명조끼 착용 불량) | 4 |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1회만 채점한다. |
| | 다) 출발준비 불량 | (1) 분담된 임무에 해당하는 위치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위치 선정 불량)
(2) 출발 전 앞·뒤·왼쪽·오른쪽 물표(物標) 및 장애물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⑤출항 전 안전 미확인) | 4 | 각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1회만 채점한다. |
| 2) 출발 및 기주(機走) | 가) 크루(crew) 지휘 불량 | 스키퍼(skipper)가 크루에게 지시를 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또는 시험관이 들을 수 없을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지시한 경우(⑤지휘 불량) | 4 |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1회만 채점한다. |
| | 나) 이안 불량 | (1) 요트의 선체가 직접 계류장과 부딪친 경우(⑤계류장 충격)
(2) 이안 후 펜더(fender)를 달고 운항한 경우(㉔펜더 달고 운항)
(3) 이안 후 계류줄을 정리하지 않고 운 | 3 | 각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2회까지 채점할 수 있다. |

| | | | |
|---------------------|--|---|--|
| | <p>항한 경우(㉔계류줄 미정리)</p> <p>(4) 출항준비 지시 후 계류줄을 건지 않는 등 준비상태가 불량한 경우(㉔출항준비 불량)</p> <p>(5) 2회 이상 이안 시도 후에도 계류장을 벗어나지 못한 경우(㉔2회 이상 이안 곤란)</p> | | |
| 다) 이안 시 급발진 및 엔진 정지 | <p>(1) 엔진 시동을 걸지 못한 경우(㉔엔진 시동 미숙)</p> <p>(2) 엔진 시동 중 레버 조작을 잘못하여 엔진이 정지한 경우(㉔레버 조작 불량)</p> <p>(3) 레버를 급히 조작함으로써 급하게 출발한 경우(㉔레버 급조작, 급출발)</p> | 4 | 각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1회만 채점한다. |
| 라) 항내 기주 시속력 미준수 | 항내 기주 시 규정 속도를 초과한 경우(㉔항내 기주 5노트 초과) | 4 | <p>(1)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2회까지 채점할 수 있다.</p> <p>(2) 시험관은 해당 시험장의 제한속도를 응시자에게 제시해야 한다.</p> <p>(3) 바람이나 충돌위험 회피 등의 사유로 시험관의 지시에 따라 속력을 초과한 경우에는 감점하지 않는다.</p> |
| 마) 침로 기주 불량 | <p>(1) 지시된 침로를 15초 이내에 $\pm 5^\circ$ 이내로 유지하지 못한 경우(㉔지정 침로 $\pm 5^\circ$초과)</p> <p>(2) 변침 후 침로를 $\pm 5^\circ$ 이내에서 유지</p> | 4 | <p>(가) 각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3회까지 채점할 수 있다.</p> <p>(나) 변침은 좌현·우현을 달리하여 3회 실시하고, 변침 범위는 45°, 90° 및</p> |

| | | | | |
|-----------|--|--|---|--|
| | | 하지 못한 경우(㉔침로 유지 불량) | | 180° 내외로 각 1회 실시해야 하며, 나침반으로 변침 방위를 평가한다.
(다) 변침 후 15초 이상 침로를 유지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 3) 범주(帆走) | 가) 크루 태킹
(tacking: 맞바람
방향 전환) 역할
불량 | (1) 스키퍼의 태킹 준비 지시에 따른 필요한 동작을 하지 않은 경우(㉔준비 동작 불량)
(2) 스키퍼의 태킹 지시에 따라 필요한 동작을 하지 않거나 민첩하게 동작하지 않은 경우(㉔태킹동작 불량)
(3) 태킹 후 위치 선정이 불량한 경우(㉔위치 선정 불량)
(4) 태킹 후 돛의 조절 또는 시트 상태가 불량한 경우(㉔돛 또는 시트 상태 불량) | 3 | (가) 해당 과제 평가 시 바람이 불지 않아 범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주에 의하여 범주를 평가할 수 있다.
(나) 각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3회까지 채점할 수 있다. |
| | 나) 스키퍼 태킹 불량 | (1) 태킹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태킹이 지나쳐 클로즈 리치(close reach) 이상 회전한 경우(㉔태킹 불량)
(2) 필요한 지시를 생략하거나 부정확하게 또는 작은 목소리로 지시한 경우(㉔태킹 지휘 불량)
(3) 태킹 후 침로 및 지정 침로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㉔태킹 후 침로 유지 불량)
(4) 태킹 후 위치 이동이 불량한 경우 | 4 | 각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2회까지 채점할 수 있다. |

| | | | | |
|-------|--|--|---|---------------------------------|
| | | (㉔위치 이동 불량) | | |
| | 다) 크루 자이빙
(gybing: 뒷바람
방향 전환) 역할
불량 | (1) 스키퍼의 자이빙 준비 지시에 따른
필요한 동작을 하지 않은 경우(㉔준
비 동작 불량)
(2) 스키퍼의 자이빙 지시에 따라 필요
한 동작을 하지 않거나 민첩하게 동작
하지 않은 경우(㉔자이빙 동작 불량)
(3) 자이빙 후 위치 선정이 불량한 경우
(㉔위치 선정 불량)
(4) 자이빙 후 돛의 조절 또는 시트 상
태가 불량한 경우(㉔돛 또는 시트 상
태 불량) | 3 | 각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3회까지 채점할
수 있다. |
| | 라) 스키퍼 자이빙
불량 | (1) 자이빙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이
빙이 지나쳐 브로드 리치(broad
reach) 이상 회전한 경우(㉔방향 전
환 불량)
(2) 필요한 지시를 생략하거나, 부정확
하게 또는 작은 목소리로 지시한 경
우(㉔자이빙 지휘 불량)
(3) 자이빙 후 침로 및 지정 침로를 유
지하지 못한 경우(㉔자이빙 후 침로
유지 불량)
(4) 방향 전환 후 위치 이동이 불량한
경우(㉔위치 이동 불량) | 4 | 각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2회까지 채점할
수 있다. |
| 4) 입항 | 가) 접안 불량
법제처 | (1) 지정 계류석으로부터 50미터의 거 | 4 | 각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1회만 채점한다. |

| | | | |
|---------------------|---|---|----------------------------|
| | <p>리에서 3노트 이하로 속도를 낮추지 않거나 접안 위치에서 변속기어를 중립으로 하지 않은 경우(㉔50미터 전방 3노트 초과, 변속기어 미중립)</p> <p>(2) 계류장과 선체가 직접 부딪친 경우(㉔계류장 충돌)</p> <p>(3) 시험선과 계류장이 2미터 이내의 거리로 평행이 되게 접안하지 못한 경우(㉔접안 불량)</p> | | |
| 나) 계류 불량 | <p>(1) 계류해야 할 위치에 계류하지 못한 경우(㉔계류 위치 부적절)</p> <p>(2) 계류줄을 묶는 방법이 틀리거나 풀리기 쉽게 묶은 경우(㉔결삭 불량)</p> | 3 | 각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1회만 채점한다. |
| 다) 펜더(fender) 취급 미숙 | <p>(1) 펜더를 요트 접안 현의 적당한 높이에 달지 못한 경우(㉔펜더 높이 부적절)</p> <p>(2) 펜더에 달린 로프의 묶은 부분이 느슨하거나 풀린 경우(㉔펜더 묶인 상태 부적절)</p> | 3 | 각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1회만 채점한다. |
| 라) 뒷정리 불량 | 로프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경우(㉔계류 후 로프 정리 불량) | 3 |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2회까지 채점할 수 있다. |

5) 실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유로 시험을 중단하고 “실격”으로 처리한다.

가) 출발 지시 후 3분 이내에 계류장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응시자가 시험 포기의 의사를 밝힌 경우: 3분 이내 출발 불가 및 응시자 시험포기

나) 주어진 위치 및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각종 장치의 조작 미숙 등 조종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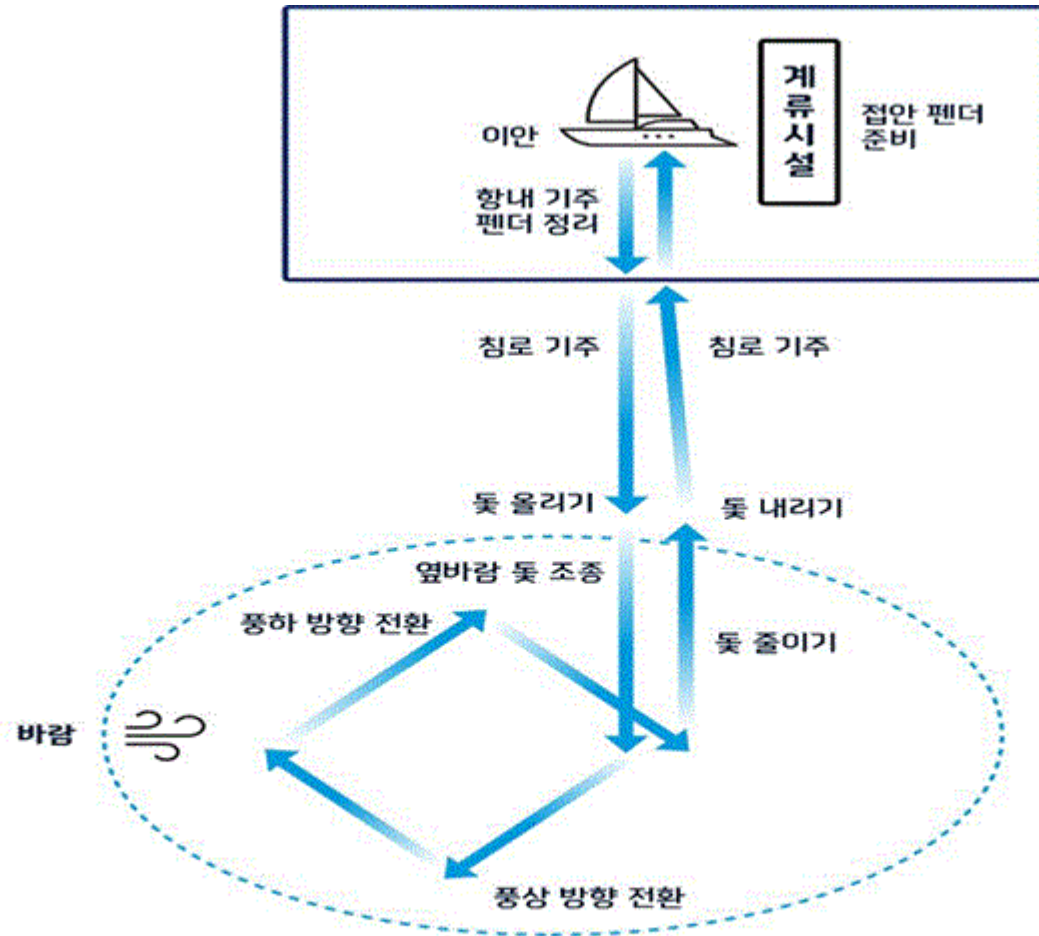
한 조종능력 부족

- 다) 계류장 등과 심하게 충돌하는 등 사고를 일으키거나 조종능력의 부족으로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 현저한 사고위험
- 라) 사고 예방과 시험 진행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시험관의 지시·통제 불응
- 마) 이미 감점한 점수의 합계가 합격기준에 미달함이 명백한 경우: 중간점수 합격기준 미달

비고

- 제2호가목의 채점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기주”란 엔진만을 이용하여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 나. “크루”란 스키퍼 외에 요트의 운항을 돕는 승조원(乗助員)을 말한다.
 - 다. “스키퍼”란 선장, 정장(艇長) 등 요트를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 라. “이안”이란 계류줄을 걷고 계류장에서 이탈하여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행위를 말한다.
 - 마. “범주(帆走)”란 돛만을 이용하여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 바. “클로즈 리치”란 바람방향에서 $70^{\circ} \sim 75^{\circ}$ 정도로 바람을 거슬러 범주하는 것을 말한다.
 - 사. “브로드 리치”란 바람방향에서 뒤쪽($110^{\circ} \sim 120^{\circ}$)으로 바람을 받아 범주하는 것을 말한다.
- 세부 내용란 중 ()의 내용은 시험관이 채점 과정에서 착오가 없도록 채점표에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사항이다.
- 세부 내용란 중 ()에 표시된 ㉠은 크루(crew)를, ㉡는 스키퍼(skipper)를 각각 의미하며, ()에 표시된 ㉠·㉡에게 그 세부 내용에 관한 채점기준을 적용하고, 표시가 없는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응시자 모두에게 적용한다.
- 실기시험 진행 중에 감점 사항을 즉시 알리면 응시자를 불안하게 할 수 있으므로 감점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채점표에 표시하고, 실기시험이 끝난 후 응시자가 채점 내용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책임운영자 등이 해당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나. 운항코스



비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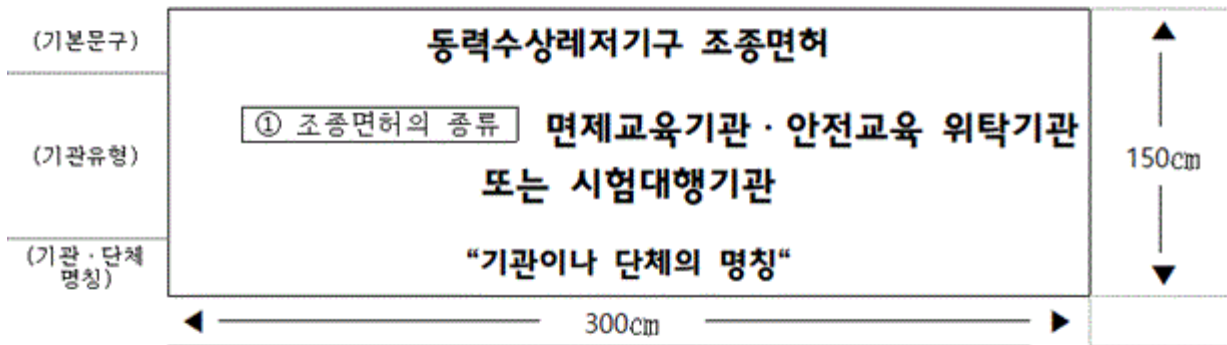
1. 운항코스 시험은 충돌 위험이 있거나 진로를 방해할 수 있는 양식장, 항로표지 등이 없는 개방수역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2. 운항코스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항로와 겹치지 않아야 한다.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안전교육 위탁기관 또는 시험대행기관 표지판의 규격

(제8조제4항·제13조제4항·제20조제4항 관련)

1. 표지판의 색상
 - 가. 바탕색: 파란색(C100+M75+K50)
 - 나. 글자: 흰색
2. 표지판의 재질: 폴리염화비닐(PVC CAL)
3. 표지판의 크기: 가로 300센티미터 및 세로 150센티미터
4. 표지판의 글자 규격: 윤고딕 250포인트
 - 가. 기본문구: 23센티미터(세로 기준)
 - 나. 기관유형: 15센티미터(세로 기준)
 - 다. 기관 또는 단체 명칭: 15센티미터(세로 기준)



비고

1. ①란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종면허의 종류를 적는다.
2. 해당 기관 또는 단체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표지판에 적는다.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요트 면제교육기관·일반(1급·2급) 시험장
<hr/>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 일반(2급)·요트 면제교육기관
· 일반(1·2급)·요트 시험장
· 수상안전교육장
<hr/>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 |
|--|--|
| (예시) 요트조종면허 면제교육기관이면서 일반 조종면허(제1급 및 제2급) 시험대행기관인 경우 | (예시) 일반조종면허(제2급) 및 요트조종면허 면제교육기관이고, 일반조종면허(제1급 및 제2급) 및 요트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이면서 안전교육 위탁기관인 경우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6. 7. 13.>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교육내용·교육시간 및 교육방법(제9조 관련)

1. 제2급 조종면허

| 교육내용 | 세부 내용 | 교육
시간 | 교육
방법 |
|-------------------|---|----------|---------------|
| 가. 수상레저
관계 법령 | 1) 「수상레저안전법」
2)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4) 「해사안전기본법」 및 「해상교통안전법」
5) 「해양환경관리법」
6) 「항로표지법」 | 4시간 | 이론 |
| 나. 수상 상식 | 1) 수상 기초(해류, 조류, 조석, 암초, 어망 등)
2) 해양기상(기상 개요, 기상 요소, 기상도, 기상
예보 등) | 4시간 | 이론 |
| 다. 구급 및
응급처치 | 1) 각종 구명장비 및 사용법
2) 수상에서의 생존 요령, 체온손실 응급처치
3) 인공호흡법 및 심폐소생법 | 4시간 | 이론
및
실습 |
| 라. 모터보트
개요 | 1) 구조
2) 조종 성능(추진장치와 키의 작용, 정지타력,
선회권, 활주, 트림 등)
3)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연결하는 경우 안전조
종 | 4시간 | 이론 |
| 마. 항해 및
기관(機關) | 1) 항해 계기, 항로 표시, 해도(종류, 용도, 보는
법, 위치·거리 구하기 등), 항해방법
2) 추진기관의 종류 및 취급, 연료, 냉각수, 윤활유 | 4시간 | 이론
및
실습 |
| 바. 조종술(操
縱術) | 1) 핸들 및 속도전환 레버 등의 조작 요령
2) 출발 전 점검 및 출발 요령
3) 저속에서의 직진·선회·변침 및 정지 요령
3) 중속·고속에서의 직진·선회·변침 및 정지
요령
4) 장애물 회피 요령
5) 후진 및 접안 방법
6) 인명구조 요령 | 16시간 | 실습 |

2. 요트조종면허

| 교육내용 | 세부 내용 | 교육
시간 | 교육
방법 |
|------------------|--|----------|---------------|
| 가. 수상레저
관계 법령 | 1) 「수상레저안전법」
2)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4) 「해사안전기본법」 및 「해상교통안전법」
5) 「해양환경관리법」
6) 「항로표지법」 | 4시간 | 이론 |
| 나. 수상 상식 | 1) 수상 기초(해류, 조류, 조석, 압초, 어망 등)
2) 해양기상(기상 개요, 기상 요소, 기상도, 기상예
보 등) | 4시간 | 이론 |
| 다. 구급 및
응급처치 | 1) 각종 구명장비 및 사용법
2) 수상에서의 생존 요령, 체온손실 응급처치
3) 인공호흡법 및 심폐소생법 | 4시간 | 이론
및
실습 |
| 라. 요트 개
요 | 1) 구조 및 장비(선체, 돛, 돛대와 붐, 리깅, 그 밖의
부속품 등)의 구성·원리·취급방법
2) 요트의 추진원리(바람과 범주, 풍압과 횡저항
및 기본 범주법 등) | 4시간 | 이론 |
| 마. 항해 및
기관 | 1) 항해 계기, 항로 표시, 해도(종류, 용도, 보는
법, 위치·거리 구하기 등), 항해계획서 작성, 항
법 및 통신용 장비
2) 추진기관의 종류 및 취급, 연료, 냉각수, 윤활유 | 6시간 | 이론
및
실습 |
| 바. 범주법(帆
走法) | 1) 접이안 및 결삭법
2) 풍상 범주법
3) 풍하 범주법
4) 자유 범주법 | 18시간 | 실습 |

| | | | |
|--|--|--|--|
| | 5) 악천후 범주법
6) 해도 및 계기를 이용한 목적지 항해, 원해 항해
7) 범주 시 인명구조 요령 | | |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종사자의 준수사항 및 면허증 발급절차(제10조 관련)

1.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종사자의 준수사항

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장은 다음의 서류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비치해야 한다.

- 1) 정관
- 2)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서와 지정 관련 서류
- 3) 종사자 명부(강사의 자격증 등 자격요건을 입증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 4) 다음 사항이 포함된 면허시험 면제교육에 관한 업무 규정
 - (가) 교육과목·내용·방법 및 교육시간에 관한 계획안
 - (나) 시청각교육용 시설 및 영상교육 교재에 관한 사항
 - (다) 면허시험 면제교육 업무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 (라) 교육장별 책임운영자 및 강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
 - (마) 강사의 준수사항 및 부정행위 처벌에 관한 사항
 - (바) 교육장비·설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사) 종사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아) 그 밖에 면허시험 면제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5)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6) 그 밖에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교육 실시에 관한 서류

나.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다음의 사항을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설비에 관한 사항
- 2) 교육 관련 서류·대장의 기재 사항 및 관리·보관에 관한 사항
- 3) 교육 관련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
- 4) 강사의 자격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 5)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6) 교육용 수상레저기구의 보유 현황 및 보수유지에 관한 사항
- 7) 교육생의 출석부
- 8) 분기별 교육 결과 보고서 및 실시계획서
- 9)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장이 발행한 수수료증 발급대장
- 10)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요청한 사항

다.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시작 3일 전까지 교육실시계획을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교육이 종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결과보고서와 수수료증을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출석부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영상 등 교육생의 출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2) 교육 관련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
- 3) 민원 발생상황 및 민원 처리 결과(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제출한다)
- 4) 교육내용별 담당 강사 현황

라.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교육 업무 관련 종사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교육 종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성실하게 교육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2) 허위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을 받도록 알선, 교사 또는 방조

해서는 안 된다.

3) 교육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이나 그 밖의 부정한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연기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된다.

5) 그 밖에 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마. 1일 교육시간은 총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실습을 위한 교육시간은 4시간 이내로 운영해야 한다.

바.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장은 1개월 이상 면허시험 면제교육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교육 중지일 5일 전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해당 교육을 중지하는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물의 신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개월의 범위에서 그 중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면허시험 면제자에 대한 면허증 발급절차

가. 해양경찰서장은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확인·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서장은 제출받은 서류의 확인·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나. 해양경찰서장은 가목에 따른 서류의 확인·검토 및 현장 확인을 한 후 면허증 취득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면허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 해양경찰서장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장이 제출한 서류를 그 제출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 해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한 면허증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6. 7. 13.>

수상안전교육의 과목 및 내용 등(제13조제1항 관련)

1. 수상안전교육의 과목·내용 및 시간

| 과목 | 내용 | 교육시간 | |
|--|--|----------------|---------|
| | | 신규 면허
시험 응시 | 면허종의 갱신 |
| 가. 수상안전
에 관한 법
령 | 1)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기구의 동
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등
수상레저안전 관계 법령에 규정된 안전 의무
및 금지 사항
2) 법령 위반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및 행정
처분 사례 등 | 30분 | 20분 |
| 나. 수상레저
기구의 사
용과 관리 | 1) 수상레저기구의 구조 및 추진방식
2) 수상레저활동 전·후의 점검사항
3) 소모성 부품의 교환 및 보관 요령
4) 자주 발생하는 고장 및 응급조치 방법 등 | 50분 | 40분 |
| 다. 수상레저
기구 간 연
결 시 수상
레저 활동
실무 | 1) 조종자 및 탑승객 주의사항
2) 장비 사용 및 관리 방법
3) 표준 수신호의 종류 및 사용 방법
4)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연결하여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 동력수
상레저기구별 주행 방법 | 20분 | 20분 |
| 라. 수상안전
상식 | 1) 해양 위험 기상(강풍, 풍랑, 태풍 등 수상에
서 안전을 위협하는 기상현상)의 종류와 대
처 방법
2) 수상레저활동에 필요한 기초상식(휴대전화
충전상태 확인, 구명조끼 등의 안전장비 착용
방법, 수상레저활동 전 기상상태 확인 방법
등) | 40분 | 20분 |
| 마. 수상구조 | 1) 구명장비의 사용법
2) 조난이 발생하거나 물에 빠진 경우의 생존
요령
3) 응급처치 방법, 인공호흡 방법 및 심폐소생 | 40분 | 20분 |

| | | | |
|--|-------------------------|--|--|
| | 술 | | |
| | 4) 위급상황 및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 | |
| | 5) 익수자(溺水者) 구조 방법 | | |

2. 수상안전교육의 방법

가. 신규 면허시험 응시를 위한 수상안전교육: 집합교육

나. 면허증 갱신을 위한 수상안전교육: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이 경우 온라인교육으로 수상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수시험을 실시하며,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안전교육 이수자로 인정한다.

■ 수상레이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6]

조종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세부 기준(제1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조종면허의 효력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효력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효력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일반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를 모두 소지한 사람이 조종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위반행위 시 사용한 동력수상레이저기구의 조종 또는 운항에 필요한 조종면허에 대해서만 취소하거나 효력정지처분을 해야 한다.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면허를 받은 경우 | 법 제17조 제1항제1호 | 면허
취소 | | | |
| 나. 조종면허 효력정지 기간에 조종을 한 경우 | 법 제17조 제1항제2호 | 면허
취소 | | | |

| | | | | | |
|---|---------------|-------|----|--|--|
| 다.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1) 「국가보안법」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범죄행위
2) 「형법」 등을 위반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가) 살인·사체유기 또는 방화
나) 강도·강간 또는 강제추행
다) 약취·유인 또는 감금
라)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 법 제17조 제1항제3호 | 면허 취소 | | | |
| 라. 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조종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 경우 | 법 제17조 제1항제4호 | 면허 취소 | | | |
| 마.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조종면허를 받은 경우 | 법 제17조 제1항제5호 | 면허 취소 | | | |
| 바.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17조 제1항제6호 | 면허 취소 | | | |
| 사.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법 제17조 제1항제7호 | | | | |
| 1)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죽 | | 효력 | 면허 | | |

| | | | | | |
|--|-------------------|-----------------|-----------------|-----------------|----------|
| 게 한 경우, 사람에게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단한 상해를 입힌 경우 또는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 | 정지
6개월 | 취소 | | |
| 2) 과실로 사람에게 3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단한 상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 | 경고 | 효력
정지
2개월 | 효력
정지
6개월 | 면허
취소 |
| 아.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어 조종하게 한 경우 | 법 제17조
제1항제8호 | 효력
정지
3개월 | 효력
정지
6개월 | 면허
취소 | |
| 자. 법 제28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 | 법 제17조
제1항제9호 | 효력
정지
6개월 | 면허
취소 | | |
| 차.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7조
제1항제10호 | 경고 | 효력
정지
2개월 | 효력
정지
6개월 | 면허
취소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

야간 운항장비의 세부 기준(제29조제1항 관련)

| 운항장비 | 세부 기준 | 수량 |
|-------------------|--|-------|
| 1. 항해등 | 가. 동력수상레저기구(세일링요트는 제외한다)의 항해등은 「해사안전법」 제81조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행 중인 동력선의 등화로 표시할 것
나. 세일링요트의 항해등은 「해사안전법」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행 중인 범선의 등화로 표시할 것
다.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항해등은 「해사안전법」 제83조제5항에 따른 노도선(櫓權船)의 등화로 표시할 것
라. 수상레저기구의 운항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는 1개의 백색 전주등만을 설치할 수 있다. | - |
| 2. 전등 | 서치라이트(search Light) 또는 방수형 랜턴일 것 | 1 |
| 3. 야간 조난신호 장비 | 로켓낙하산 신호, 신호홍염(전자식 장비를 포함한다) 또는 불꽃신호기(전자식 장비를 포함한다)일 것 | 1 |
| 4. 등(燈)이 부착된 구명조끼 | 구명조끼 표시등(life jacket light)이 부착되어 있을 것 | 정원의 수 |
| 5. 통신기기 | 초단파 무선설비(VHF), 초고속 해상무선통신(LTE-M) 송수신기 또는 휴대전화. 이 경우 휴대전화를 통신기기로 사용할 때에는 운항하는 동안 통화 또는 문자메시지의 송수신이 가능한 상태를 항상 유지해야 한다. | 1 |
| 6. 구명부환 |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품일 것. 다만, 수상레저기구의 운항구역이 내수면이거나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인 경우에는 레스큐(rescue) 튜브로 구명부환을 대체할 수 있다. | 1 |
| 7. 소화기 | 수상레저기구(무동력수상레저기구는 제외한다)에 화재사고 발생 시 화재의 확산방지 및 진압에 적합한 휴대식 또는 간이식 소화기를 갖추어 것 | 1 |
| 8. 자기점화등
법제처 |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품일 것 | 1 |

| | | |
|------------|---|---|
| | 것 | |
| 9. 나침반 | 조타 자기컴퍼스 또는 휴대용 자기컴퍼스일 것 | 1 |
| 10. 위성항법장치 | 보정위성항법장치(DGPS), 위성항법장치(GPS)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갖출 것. 이 경우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사용할 때에는 운항하는 동안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항상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 1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제32조제1항 관련)

1. 수상레저사업(제32조제3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은 제외한다)

가. 영업구역: 수상레저사업장의 규모,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및 수상레저사업 종사자 인원 등을 고려할 때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질서를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일 것

나. 시설기준: 수상레저기구의 계류장·탑승장·매표소·화장실 및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을 위한 대기시설을 갖추는 것

다. 인력기준: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 중에서 1명 이상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허를 소지할 것. 이 경우 1)에 따른 조종면허를 갖추고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 다른 수상레저사업장 등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 1)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경우: 1급 조종면허
- 2) 무동력수상레저기구(래프팅용 수상레저기구는 제외한다)만을 사용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경우: 2급 이상의 조종면허
- 3) 세일링요트만을 사용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경우: 요트조종면허

라. 수상레저기구

- 1) 공통기준: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인 경우만 해당한다)이거나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은 수상레저기구일 것
- 2) 영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모두 갖추는 것

가) 블롭점프

- (1) 점프대의 높이는 수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일 것
- (2) 에어매트(점프대 아래에 설치하는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주변의 수심은 2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수면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도록 에어매트의 앞쪽으로 5미터 이상, 양옆으로 3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며, 부표 등을 설치하여 해당 공간을 표시할 것
- (3) 에어매트는 움직이지 않도록 로프 등으로 고정하고, 로프 등은 에어매트 밑으로 설치할 것
- (4) 점프대에서 뛰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 점프대와 에어매트는 2미터 이상 겹쳐서 설치할 것

- (5) 선착장 정면부 등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에 방해되는 장소에 설치

하지 않을 것

나) 워터파크

- (1) 워터파크의 높이는 수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일 것
- (2) 워터파크 주변의 수심은 1미터 이상일 것
- (3) 워터파크 주변에는 물에 빠진 사람을 신속하게 구조하기 위하여 폰툰(Pontoon) 등 도보이동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고, 워터파크와 도보이동을 위한 설비 사이의 거리는 1미터 이상일 것
- (4) 선착장 정면부 등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을 방해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지 않을 것

마. 인명구조용 장비: 다음의 장비를 모두 갖추어 것

| 구분 | 세부 기준 |
|---------|---|
| 1) 구명조끼 |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 또는 어선의 구명설비기준에 적합한 제품일 것
나) 수상레저기구 탑승정원의 1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를 갖추고, 그 탑승정원의 10퍼센트는 소아용으로 갖추어 것 |
| 2) 안전모 | 가) 안전모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 것
(1) 충격 흡수기능이 있을 것
(2)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3)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않는 구조일 것
(4) 상하좌우로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5) 청력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나) 영 제2조제2항제6호·제14호에 따른 워터슬레이드 또는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를 사용하거나 래프팅을 하는 경우에는 탑승정원의 1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안전모를 갖추고, 그 탑승정원의 10퍼센트는 소아용으로 갖추어 것 |
| 3) 구명부환 | 가) 탑승정원이 4명 이상인 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 및 워터슬레이드는 제외한다)에는 그 탑승정원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상의 구명부환을 갖추어 것. 이 경우 무동력수상레저기구에는 구명부환을 대체하여 스로 백(throw bag: 구명 구조 로프 가방)을 갖추어 수 있다.
나) 가)의 후단에 따른 스로 백에 딸린 구명줄은 지름 6밀리미터 이상, 길이 20미터 이상일 것 |
| 4) 구명줄 | 탑승정원이 13명 이상인 수상레저기구에는 지름이 10밀리미터 이상,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구명줄을 1개 이상 갖추어 것 |

| | |
|-----------------|---|
| 5) 예비용 노 또는 상앗대 | 가) 노 또는 상앗대가 있는 수상레저기구는 노 또는 상앗대 수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예비용 노 또는 상앗대를 갖추 것
나) 탑승정원이 4명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는 제외한다)에는 2개 이상의 예비용 노를 갖추 것 |
| 6) 통신장비 | 영업구역이 2해리 이상인 경우에는 수상레저기구에 해당 사업장 또는 가까운 무선국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 것 |
| 7) 소화기 | 가) 탑승 정원이 13명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에는 선실, 조타실(操舵室) 및 기관실에 각 1개 이상의 소화기를 갖추 것
나) 탑승 정원이 4명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는 제외한다)에는 1개 이상의 소화기를 갖추 것 |

바. 비상구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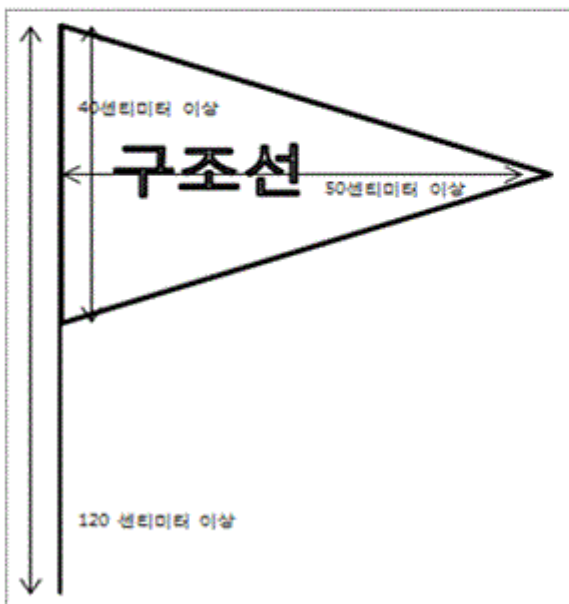
1) 수상레저기구(래프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와 수상스키, 파라세일, 워터슬레이드 등 견인되는 수상레저기구는 제외한다)의 수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상구조선을 갖추 것. 다만, 케이블 수상스키 또는 케이블 웨이크보드 등 케이블을 사용하는 수상레저기구만을 갖춘 수상레저사업장의 경우에는 다른 수상레저기구가 없더라도 반드시 1대 이상의 비상구조선을 갖춰야 한다.

가) 수상레저기구가 30대 이하인 경우: 1대 이상

나) 수상레저기구가 31대 이상 50대 이하인 경우: 2대 이상

다) 수상레저기구가 51대 이상인 경우: 50대를 초과하는 50대마다 1대씩 더한 수 이상

2) 비상구조선은 수상레저사업자가 해당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 중에서 지정하여 사용하고, 아래 표에서 정하는 규격의 깃발을 비상구조선에 부착할 것

| | |
|---|--|
|  | <p>가) 깃발의 크기: 가로 50센티미터 이상 및 세로 40센티미터 이상</p> <p>나) 깃발의 색상: 주황색(RGB 254.97.0)</p> <p>다) 깃발의 재질: 폴리에스테르 방수원단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p> <p>라) 깃대의 높이: 120센티미터 이상</p> <p>마) 글자(구조선)의 크기 및 색상: 높이 8센티미터 이상 및 흰색</p> |
|---|--|

3) 탑승정원이 3명 이상이고 속도가 20노트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 가) 망원경 1개 이상
- 나) 구명부환 또는 레스큐 튜브 2개 이상
- 다) 호루라기 1개 이상
- 라) 30미터 이상의 구명줄

- 4) 비상구조선은 사업장 구역의 순시(巡視)와 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를 위하여 사용해야 하며, 영업 중에는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평수구역, 연해구역, 근해구역 또는 원양구역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를 사용하는 수상레저사업자가 그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의 수만큼 해당 수상레저기구에 비상구조선을 적재한 경우는 제외한다.
- 5) 제32조제7항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호나목에 따른 시설기준 중 수상레저기구의 계류장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상구조선을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수면과 가까운 장소에 비상구조선을 둘 것

사.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

- 1) 비상구조선의 수에 해당하는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고 래프팅의 경우에는 래프팅기구의 수에 해당하는 래프팅가이드를 배치할 것. 다만, 승선정원이 4명 이하인 래프팅기구의 경우에는 영 제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의 래프팅가이드를 배치하고, 워터파크의 경우에는 면적이 660m²를 초과할 때마다 1명의 인명구조요원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 2)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구조선의 수에 따라 두는 인명구조요원 외에 각 기구마다 별도의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할 것
- 3)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 자격을 갖추고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 다른 수상레저사업장 등에 종사하지 않을 것

2. 제32조제3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가. 시설기준: 제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갖추어 것

나. 수상레저기구: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은 수상레저기구일 것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9]

동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제38조 관련)

1. 영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블롭점프)를 운영하는 경우
 - 가. 에어매트의 공기 주입구와 표면 및 정박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나. 점프대에서 뛰는 사람과 에어매트에서 수면으로 떨어지는 사람은 각 1명으로 한정한다.
 - 다. 점프대 위와 아래에 각 1명 이상의 관리자를 배치해야 하며, 점프대 아래의 관리자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 라. 이용자가 구명조끼와 안전모를 착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 마. 이용자가 관리자의 감독하에 주간에만 해당 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제32조제3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가. 빌려주는 보드, 보드 리쉬 및 패들 등의 수상레저기구와 부속품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나. 해당 수상레저사업장 주변 수역의 기상정보, 조류, 위험한 지형지물 등의 수상상태 및 안전수칙(보드 리쉬 착용 등)을 수상레저기구를 빌리는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 다. 수상레저기구를 빌리는 사람에게 해당 수상레저기구의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을 수상(水上)에서 알려주거나 교육할 때에는 안전사고의 수습 및 인명구조를 위하여 휴대용 구명부환, 레스큐 튜브 등의 휴대용 구명장비를 갖춰야 한다.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세부 기준(제3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48조 제1호 | 등록
취소 | | | |
| 나. 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48조 제2호 | 등록
취소 | | | |
| 다.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법 제48조 제3호 | 등록
취소 | | | |
| 라.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 | 법 제48조 | | | | |

| | | | | | |
|--|---------------|-----------------|-----------------|-----------------|----------|
|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상한 경우
1) 고의로 사람을 사상한 경우
2) 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피해자와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과실로 사람에게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단한 상해를 입힌 경우(피해자와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4호 | 등록
취소 | | | |
| | |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2개월 | 등록
취소 | |
| | | 경고 |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2개월 | 등록
취소 |
| 마. 수상레저사업자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사업에 이용한 경우 | 법 제48조
제5호 |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2개월 | 등록
취소 | |
| 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8조
제6호 |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2개월 | 등록
취소 | |
| 사. 법 제42조부터 제46조까지, 제49조제2항, 제50조의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1) 법 제42조를 위반한 경우
2) 법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49조제2항, 제50조의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8조
제7호 | 경고 |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3개월 | 등록
취소 |
| | |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3개월 | 등록
취소 |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신설 2025. 6. 9.>

보험등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기간(제39조의2제1항 관련)

| 구분 | 통지 기간 |
|--------------------------------------|--|
| 1.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등 계약의 체결 사실 | 계약 체결 사실을 보험회사등이 관리·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2일 이내. 이 경우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 2.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등 계약의 해지 사실 | 계약 해지 사실을 보험회사등이 관리·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2일 이내. 이 경우 계약의 효력소멸일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 3.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험등 계약의 미체결 사실 | |
| 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에 보험등 계약이 끝난 경우 | 같은 달 20일까지 |
| 나. 매월 11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에 보험등 계약이 끝난 경우 | 같은 달 말일까지 |
| 다. 매월 2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보험등 계약이 끝난 경우 | 다음 달 10일까지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수수료(제40조제1항 관련)

| 납부 대상자 | 금액 |
|--|-------------------------------------|
| 1.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가) 필기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나) 실기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 4,800원
64,800원 |
|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 14,400원(교재비를 포함한다) |
| 3. 법 제15조에 따라 면허증의 발급, 재발급 또는 갱신을 신청하려는 사람
가) 면허증의 신규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
나) 면허증의 재발급 또는 갱신을 신청하려는 사람 | 5,000원
4,000원 |
| 4. 법 제37조 및 제41조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의 등록·변경등록 및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등을 신청하려는 자
가) 수상레저사업의 신규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나) 수상레저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다) 수상레저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
라) 수상레저사업의 재개업을 신고하려는 자 | 20,000원
10,000원
없음
20,000원 |

조종면허 결격사유 통보대장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boat.kcg.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응시원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 | | | | | | | |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접수자 | | 확인자 | |
| 신청인 | 성명 | | | 생년월일 | | | |
| | 주소 | | |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 | | |
| 응시자 | 성명(한글)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
| | 주소 | | | | | | |
| | 국적 | 전화번호(자택) | | | 사진
(3.5cm × 4.5cm)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상반신을
촬영한 것) | | |
| | | 휴대전화번호 | | | | | |
| | | 전자우편 | | | | | |
| 응시
면허의
종류 | [] 제1급 조종면허, [] 제2급 조종면허, [] 요트조종면허 | | | | | | |
| 면허시험
면제 과목 | 필기시험 | | | 실기시험 | | | |

「수상레저안전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응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취득)

| | | |
|--------------|---|--------------------------------------|
| 제출서류 | 1.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인 것) 1장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응시자가 14세 미만(제1급 조종면허의 경우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응시자가 면허시험 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수수료
필기시험: 4,800원
실기시험: 64,800원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응시자가 외국인이거나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신청인은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국가가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응시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과 응시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3.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수상레저안전법」 제11조에 따라 면허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인하여 해당 시험의 중지 또는 무효의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5. 「수상레저안전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조종면허가 취소됩니다.

210mm × 297mm[백상지 150g/㎡]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

| 접수 | | 성명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 시험
종류 |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응시현황 | | | | | | | | | |
|-----|----|----|-------------------|----------|------------------|----|----|----|----|---|---|---|---|---|
| 연월일 | 번호 | | |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 | | | |
| | | | | 필기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
| | | | | 실기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
| | | | | 필기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
| | | | | 실기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
| | | | | 필기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
| | | | | 실기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
| | | | | 필기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
| | | | | 실기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
| | | | | 필기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
| | | | | 실기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
| | | | | 필기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
| | | | | 실기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
| | | | | 필기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
| | | | | 실기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
| | | | | 필기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
| | | | | 실기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

210mm × 297mm [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6. 9.>

응 시 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응시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 | | | |
|-----------------|--|----------|------|--|----|-------------------------------|
| 응시자 | 성명 | | 생년월일 | | 국적 | |
| | 주소 | | | | | |
| | 연락처 | 전화번호(자택) | | | | 사진
(3.5cm × 4.5cm)
(압인) |
| | | 휴대전화번호 | | | | |
| 전자우편 | | | | | | |
| 응시
면허의
종류 | [] 제1급 조종면허, [] 제2급 조종면허, [] 요트조종면허 | | | | | |

| 응시원서
접수번호 | 제 호 | | | 응시원서
접수일 | | |
|--------------|------|------|----|-------------|------|----|
| 응시
횟수 | 필기시험 | | | 실기시험 | | |
| | 시험일시 | 응시번호 | 결과 | 시험일시 | 응시번호 | 결과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유의사항

1.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이 시작되기 30분 전에 입실을 마쳐야 합니다.
2. 시험장에서는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등 국가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을 포함하며, 사진이 부착된 것을 말합니다) 및 컴퓨터용 사인펜을 지참해야 합니다.
3.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그 불합격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시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4.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그 불합격한 날의 다음다음 날부터 다시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5. 응시표의 유효기간은 응시원서의 접수일부터 1년까지이며, 면허시험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 필기시험 합격일부터 1년까지입니다.
6. 면허시험에 합격했다라도 조종면허증을 받기 전에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면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61조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7. 면허시험의 접수 또는 면허시험 응시일자 변경은 시험이 시작되기 30분 전까지 시험장 방문 또는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boat.kcg.go.kr)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210mm × 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일반조종면허 실기시험 채점표(No 00-00000)
(00조종면허시험장)

해양경찰청
KOREA COAST GUARD

[면허시험 종류: 일반 () 급]조종면허 [시험선 : 제 () 호] [시험시간 : 20 () 년 () 월 () 일 시 () 분부터 () 시 () 분까지] (압록)

| 응시자 | | 평가
구분 | 과제
번호 | 감점
점수 | 감점 내용 | | | | |
|----------|----------------|------------------------------------|--|--|--|---|--|---|--|
| | | | | | 9 | 6 | 4 | 3 | 2 |
| 응시
번호 | | 조

력 | 1 | 출발전 점검
및 확인(2) | | | | 구명조끼 착용불량(), 점검사항 누락() | |
| | | | 2 | 출 발(6) | | | | 30초 이상 출발 지연(), 자동정지줄 미착용(),
안전 미확인·앉기 전 출발(①③④),
15초 이내 출발침로 ±10°이내 유지 불량(),
출발침로 ±10° 이상 불안정() | 시동 불량(), 계류줄 묶임(),
출발 시 선체 접촉(), 급조작·급출발(),
레버 마찰음 발생 또는 엔진 정지(),
트릴 스위치 작동() |
| 3 | 변 침(2) | | | | | 지시 각도 ±10°초과(45,90,180) (45,90,180),
±10°이내 침로유지 불량(45,90,180) (45,90,180) | 변침 전 안전상태 미확인() (),
선체 동요() (), 변침속력 불량() () | | |
| 4 | 운 항(2) | | | | 활주시간 15초 초과() (),
활주상태 유지 불량() (),
저속 또는 과속() () | | 현들의 비정면·창틀 딸(),
고정지시 불응(), 한 손 조종·서서조종(),
불필요한 레버 조작() | | |
| 5 | 사 행(4) | | 부표 3미터접근(①③④)
(①③④)
부표 15미터초과·미사행
(①③④) (①③④) | | | 반대방향진행(), 사행진입 불량(),
사행 후 침로 불량(), 심한 요동·쉴림(),
부자연스러운 선회() | | | |
| 6 | 급정지 및
후진(2) | | | | 급정지 3초 초과(),
후진레버 사용() | | 후진방향 미확인(), 후진침로 ±10°이상(),
후진레버 급조작·급후진() | | |
| 7 | 인명구조(3) | | 물에 빠진 사람과 충돌(),
2분 이내 구조실패() | | | 3초 이내 물에 빠진 사람 미확인(),
5초 이내 물에 빠진 사람 발생방향 미전환(),
조종석 1미터 이내 접근 불량(),
3노트 이상 접근(),
레버 미종림·후진레버 사용() | | | |
| 8 | 접 안(2) | | | | | 접안속도 초과(), 평행상태 불량(),
계류장 충돌(), 접안 실패() | | | |
| 운항코스 | | | 감점 소계 | 9 × () = () | 6 × () = () | 4 × () = () | 3 × () = () | 2 × () = () | |
| 검인 | | 평가
결과 | 실
격 | 3회 이상 출발 불가(), 응시자의 시험포기(), 조종능력 부족으로 시험진행 곤란(), 현저한 사고위험(), 음주상태(),
시험관의 지시·통제 불응 또는 임의 시험 진행(), 중간점수 합격기준 미달() | | | | | |
| | | | 특
기
사
항 | | | | | | |
| 회 | | | 특
점
결
과 | 100 - () = () | 판
정 | 합
격 | 불
합
격 | 실
격 | 책임운영자 |

위와 같이 일반조종면허 실기시험을 실시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시험관 소속:

성명:

㉔

(뒤쪽)

요트조종면허 실기시험 채점표(No 00-00000)

(00조종면허시험장)

해양경찰청
KOREA COAST GUARD

[면허시험 종류: 요트조종면허] [시험선 : 제 호] [시험시간 : 20 년 월 일 시 분 부터 시 분 까지]

| 응시자 | | 평가
구분 | 과제
번호 | 감점
항목 | 감점 내용 | | | | | |
|----------|----|------------------|----------|-------------------|--|-----|--|-------|-----|-------|
| | | | | | 3 | | 4 | | | |
| 응시
번호 | 성명 | 조
중
배
표 | 1 | 출발전 점검
및 확인(3) | 8자 묶기() (), bowline 묶기() (),
clove 묶기() (), cleat 묶기() () | | 구멍조끼 착용 불량(), 위치 선정 불량(),
①출항 전 안전 미확인() | | | |
| | | | 2 | 출발 및 기주
(5) | ①계류장 충격() (), ②펜더 달고 운항() (),
③계류줄 미정리() (), ④출항준비 불량() (),
⑤2회 이상 이안 곤란() () | | ①지휘 불량(), ②연진시동 미숙(), ③레버 조작 불량(),
④레버 급조작·급출발(), ⑤항내 기주 5노트 초과() (),
⑥지정침로 ±5° 초과() () (), ⑦침로유지 불량() () () | | | |
| | | | 3 | 범 주(4) | 〈태 킁(tacking)〉
①준비동작 불량() () (),
②태킁동작 불량() () (), ③위치 선정 불량() () (),
④돛 또는 시트상태 불량() () () | | 〈태 킁(tacking)〉
①태킁 불량() (), ②태킁 지휘 불량() (),
③태킁 후 침로유지 불량() (),
④위치 이동 불량() () | | | |
| | | | | | 〈자이빙(gybing)〉
①준비동작 불량() () (),
②자이빙동작 불량() () (), ③위치 선정 불량() () (),
④돛 또는 시트상태 불량() () () | | 〈자이빙(gybing)〉
①방향전환 불량() (), ②자이빙 지휘 불량() (),
③자이빙 후 침로유지 불량() (),
④위치 이동 불량() () | | | |
| | | | | | | | | | | |
| 응시번호 | | | 4 | 입 항(4) | ①계류위치 부적절(), ②결삭 불량(), ③펜더 높이 부적절(),
④펜더 묶인 상태 부적절(), ⑤계류후 로프정리 불량() | | ①50미터 전방 3노트 초과·변속기어 미중립(),
②계류장 충돌(), ③접안 불량() | | | |
| 성명 | | 평가
결과 | 감점 소계 | | 3 × () = () | | 4 × () = () | | | |
| | | | 실 격 | | 3분 이내 출발 불가(), 응시자 시험포기(), 현저한 조종능력 부족(),
현저한 사고위험(), 시험관의 지시·통제 불응(), 중간점수 합격기준 미달() | | | | | |
| 검인 | | | 특 기 사 항 | | | | | | | |
| 인 | | | 특 점 결 과 | | 100 - () = () | 판 정 | 합 격 | 불 합 격 | 실 격 | 책임운영자 |

위와 같이 요트조종면허 실기시험을 실시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시험관 소속:

성명:

⑨

면허시험 시험성적표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신청
기관
·
단체 | 기관명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대표자 | 대표자 | 생년월일 | |
| | 주소 | (전화번호:)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 | | |
|----------------|--|-----------|
| 제출서류 | 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 및 별표 5에 따른 인적기준·장비기준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시설기준에 관한 도면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교육 실시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 또는 같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사본
4.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 |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검토 | → | 결재 | → | 지정 여부 결정 | → | 지정서 발급 |
| 신청인 | | 처리기관
(해양경찰청) | | 처리기관
(해양경찰청) | | 처리기관
(해양경찰청) | | 처리기관
(해양경찰청) | | 처리기관
(해양경찰청)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앞쪽)

| | | |
|--|------|---|
| 제 호 | | |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p>[]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p> <p>[]안전교육 위탁기관</p> <p>[]시험대행기관</p> </div> <div>지정서</div> </div> | | |
| 기관 | 기관명 | |
| | 소재지 | |
| | 전화번호 | |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p>「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제13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제13조제3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p> | | |
| 년 월 일 | | |
| 해양경찰청장 | |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width: 150px; height: 100px; margin: 0 auto;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직인 </div> |

210mm × 297mm [백상지(80g/㎡)]

변경 및 처분 사항

지정번호 제 호

| 연월일 | 내용 | 확인 |
|-----|----|----|
| | | |

210mm × 297mm [백상지 (80g/m²)]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제 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취소·[]업무정지 통지서

[]시험대행기관

| | | |
|------|------------------------------|------|
| 기관 | 기관명 | |
| | 소재지 | |
| | 전화번호 | |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처분내용 | 지정취소
년 월 일 | |
| | 업무정지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일간) | |
| | 사유 | |

1. 「수상레저안전법」 제10조제1항·제14조제1항 또는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5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취소 []업무정지)처분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 지정취소 된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해양경찰청에 해당 지정서를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 ※ 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해양경찰청장

직인

210mm × 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 10호서식]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boat.kcg.go.kr)에서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조종면허증 [☐ 사전 갱신 ☐ 갱신 연기]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신청자와 갱신 대상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신청 자란은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 | | |
|----------------------------|--|---------------|-----------|
| 신청자 | 성명 | 생년월일 | 갱신대상자와 관계 |
| | 주소 | | 전화번호 |
| 갱신
대상자 | 성명 |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면허 번호 | 수상안전교육일 | |
| | 갱신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사전 갱신
또는
갱신 연기
사유 | ☐ 군복무, ☐ 국외 체류, ☐ 재해 또는 재난,
☐ 질병 또는 부상, ☐ 법령에 따른 신체자유 구속, ☐ 그 밖의 사유 | | |
| 갱신 연기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면허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 | |

「수상레저안전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종면허증의 [☐ 사전 갱신 ☐ 갱신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귀하

| | |
|------|---------------------------------------|
| 제출서류 | 조종면허증의 사전 갱신 또는 갱신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210mm × 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 |
|--|----|
| 제 호 | 확인 |
| <p style="text-align: center;">수상안전교육 수료증</p> <p style="text-align: center;">[] 일반조종 1급 [] 일반조종 2급 [] 요트조종</p> | |
| <p>성명:</p> <p>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p> <p>「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 사람은 수상 안전교육([] 신규 면허시험 응시 또는 [] 면허증의 갱신)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수상안전교육 위탁기관장 [인]</p> | |

86mm × 54mm [백상지 120g/m²]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 12호서식]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신청
기관
·
단체 | 기관명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대표자 | 대표자 | 생년월일 | |
| | 주소 | (전화번호:)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 | | |
|----------------|--|-----------|
| 제출서류 | 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 15조제 1항제 3호 및 별표 7에 따른 인적기준·시설기준 및 장비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시설기준에 관한 도면
2. 별표 5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 실시계획서
3.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 |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검토 | → | 결재 | → | 지정 여부 결정 | → | 지정서 발급 |
| 신청인 | | 처리기관
(해양경찰청) | | 처리기관
(해양경찰청) | | 처리기관
(해양경찰청) | | 처리기관
(해양경찰청) | | 처리기관
(해양경찰청) |

210mm × 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boat.kcg.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 갱신 ☐ 재발급]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4일 |
|------|------|------|-----|

* 신청인과 갱신 또는 재발급 대상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신청인란은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 | |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갱신(재발급) 대상자와 관계 |
| | 전화번호 | 주소 | |

| | | | |
|------------------------|-------------------------|-----------------|--|
| 갱신
또는
재발급
대상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사진

(3.5cm × 4.5cm)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상반신을
촬영한 것) |
| | 주소 | 전화번호 | |
| | 면허증 수령지(주소지와 동일할 경우 생략) | | |

| | |
|-----------|---|
| 재발급
사유 | * 재발급 신청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분실, [☐ 훼손·오손, [☐ 기타 (그 밖의 사유:) |
|-----------|---|

「수상레저안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의 [☐ 갱신,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귀하

| | | |
|------|---|---------------|
| 제출서류 | 1. 조종면허증(조종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인 것) 1장
3. 수상안전교육 수료증(조종면허증을 갱신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4,000원 |
|------|---|---------------|

유의사항

1. 신청인은 신청서를 접수할 때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국가가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조종면허증 소지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과 조종면허증 소지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 |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검토 | → | 결재 | → | 조종면허증
제작 | → | 조종면허증
발급 |
| 신청인 | | 처리기관
(해양경찰서) | | 처리기관
(해양경찰서) | | 처리기관
(해양경찰서) | | 처리기관
(해양경찰서) | | 처리기관
(해양경찰서) |

210mm × 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 |
|---|--|
| (면허번호) | |
| <div>사진</div> <div>(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것)</div> | <div>면 허 증 별:</div> <div>성 명:</div> <div>생 년 월 일:</div> <div>면 허 증</div> <div>갱 신 기 간:</div> |
| (발급일) | <div>해양경찰청장</div> <div>직인</div> |

86mm×54mm [폴리염화비닐(PVC) 980.4g/m²]

(뒤쪽)

1. 조종면허 갱신기간(발급일부터 7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내에 조종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으면 그 갱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조종면허의 효력은 정지됩니다. 다만, 조종면허증의 효력이 정지된 날 이후에 조종면허증을 갱신한 경우에는 갱신한 날부터 조종면허증의 효력이 다시 발생합니다.
2. 조종면허 갱신기간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boat.kc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비고

1. 조종면허증의 바탕색은 밝고 연한 하늘색으로 하고, 원색과 발색 잉크를 복합한 미세선 문양과 위조방지용 디자인 및 비표(秘標)를 넣어야 한다.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된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에 “장기등기증희망자”의 문구를 표시할 수 있다.
3.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조직기증희망자로 등록된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에 “조직기증희망자”의 문구를 표시할 수 있다.

(앞쪽)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관리대장

사진

(3.5cm × 4.5cm)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상반신을
촬영한 것)

면허번호:

| | |
|----|---------------|
| 성명 |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
|----|---------------|

주소

| | | | | | |
|--------|-----|------|----------------|-----|------|
| 일반조종면허 | 발급일 | 발급번호 | 요트
조종
면허 | 발급일 | 발급번호 |
| 제1급 | | | | | |
| 제2급 | | | | | |

기재 사항

(뒤쪽)

[illegible]210mm×297mm[백상지 120g/m²]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boat.kcg.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발급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청인
성명 | 한글 |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 영문 | 성 | | | | |
| | | 이름 | | | | |
| 신청내용 | | 용도 | | | 수량 | |
| | | | | | 부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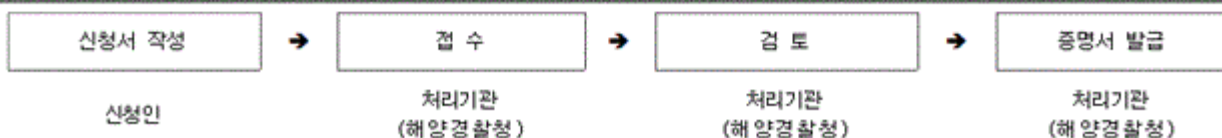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유의사항

1. 신청인은 신청서를 접수할 때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국가가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성명과 생년월일은 조종면허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적어야 합니다.
3. 영문 성명은 여권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적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210mm × 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001호(No. 001)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서 (Power-driven water leisure craft Operator's Certificate)

성명(Name):

생년월일(Date of Birth):

조종면허 종류: []제1급 조종면허, []제2급 조종면허, []요트조종면허

(Type of License: []1st Class, []2nd Class, []Yacht)

면허번호 (License No.):

갱신기간 (Renewal Period of License):

면허취득일 (Date of Acquiring License):

사진

(3.5cm × 4.5cm)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상반신을 촬영한 것)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력수상
레저기구 조종면허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named person is qualified to be an operator of the
power-driven water leisure craft as above pursuant to Article 5 of the Water-related Leisure
Activities Safety Act and article 17, clause 3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 of same Act.

년(Y) 월(M) 일(D)

해양경찰청장

Commissioner General of Korea Coast Guard

직인
seal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제 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 취소
[☐ 효력정지
[☐ 경고] 처분 통지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 면허 종류
및 번호 | 조종면허 종류 | 조종면허 번호 |
|---------------|--------------------------------|---------|
| 행정처분
결정내용 | 취소처분
년 월 일 | |
| | 효력정지처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간) | |
| | 경고처분
년 월 일 | |

사유

1. 「수상레저안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 조종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정지된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해당 조종면허증을 해양경찰서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해양경찰서장

직인

유의사항

1. 조종면허증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처분 결정내용에 따라 취소처분 또는 효력정지처분이 집행됩니다.
2. 조종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그 취소 또는 효력정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종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수상레저안전법」 제 64조제2항제1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mm × 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 | | |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30일 |
| 신청
기관
·
단체 | 기관명 |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 | 소재지 | | (전화번호:) | | |
| 대표자 | 대표자 | | 생년월일 | | |
| | 주소 | | (전화번호:) |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 | | |
|----------------|---|-----------|
| 제출서류 | 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 및 별표 9에 따른 인적기준·장비기준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시설기준에 관한 도면
2. 사업계획서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 또는 같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사본
4.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 |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검토 | → | 결재 | → | 지정 여부 결정 | → | 지정서 발급 |
| 신청인 | | 처리기관
(해양경찰청) | | 처리기관
(해양경찰청) | | 처리기관
(해양경찰청) | | 처리기관
(해양경찰청) | | 처리기관
(해양경찰청) |

210mm × 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운항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담당자 | 처리기간 | 즉시 | | |
|------|----------------------|---------|------|---------------------|---------------------|------|
|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 |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 신고사항 | 출항 | 일시 | 장소 | | | |
| | 운항구역
(활동구역) | | | | | |
| | 입항예정 | 일시 | 장소 | | | |
| | 안전관리
동력수상
레저기구 | 명칭(총톤수) | 운항구역 | 운항자 성명(전화번호) | | |
| | 선단의 구성 | 운항자 성명 | 생년월일 | 동력수상
레저기구의
종류 | 동력수상
레저기구의
명칭 |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해양경찰서장 귀하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boat.kcg.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상특보활동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수상레저기구
제원(諸元) | 수상레저기구 종류 | 활동 인원 | | |

신고사항

| 출항(활동 해변 등) | | | | 입항(활동 종료 해변 등) | |
|-----------------|-----|----------|----|----------------|-------|
| 일시 | 활동지 | 활동 종료 예정 | | 일시 | 활동종료지 |
| | | 일시 | 장소 | | |
| | | | | | |
| 동승
또는
동행자 | 성명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따라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해양경찰서장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담당자 | 처리기간 | 즉시 | |
|--------------|--|----------|--------|-------|--------------|
|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수상레저
기구제원 | 종류 | 기구명 | 총톤수 | | |
| | 재질 | 정원 | 활동인원 | | |
| 신고사항 | 출항 | 일시 | 장소 | 주 활동지 | |
| | 입항예정 | 일시 | 장소 | | |
| | 동승자 |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 | | | |
| | ① 안전관리
선박의 동행 | 선박명(총톤수) | | 항해구역 | 운항자 성명(전화번호) |
| | ② 선단의
구성 | 기구의 명칭 | 운항자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수상레저안전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해양경찰서장

경 찰 서 장 귀하

유의 사항

1.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수상레저기구로 원거리 출항을 하려는 경우에는 ① 안전관리 선박의 동행 또는 ② 선단의 구성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수상오토바이, 20톤 미만 모터보트, 20톤 미만 세일링 요트, 30마력 이상 고무보트

2. 선단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기기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수상레저사업 ☐ 등록 ☐ 등록갱신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등록: 14일
등록갱신: 5일 |
|------|------|------|---------------------|

| | | | |
|-----|---------|---------------------|---|
| 신청자 | 상호(명칭) | | |
|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 | 주소 | | |

| | |
|--------|---|
| 사업의 유형 | ☐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거나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 |
|--------|---|

사업장의 위치

영업구역

수상레저기구 명세

사업기간

| | |
|------|----|
| 영업시간 | 요금 |
|------|----|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제3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상레저사업 ☐ 등록 ☐ 등록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 × 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
|----------------|---|-------------------------------|
| 제출서류 | <p>1. 등록 신청</p> <p>가.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구역에 관한 도면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나목에 따른 시설기준 명세서 3)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다목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자와 종사자의 명단 및 해당 면허증 사본(면허증 사본의 경우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4)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 명세서 5)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사목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의 명단과 해당 자격증 사본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 또는 같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사본 <p>나. 육상에서 보관하는 서프보드·윈드서핑·카이트보드 또는 패들보드를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수상레저사업(빌린 사람이 빌린 수상레저기구를 직접 가져가거나 이동시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가목에 따른 시설기준 명세서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나목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명세서 <p>2. 등록갱신 신청</p> <p>가. 수상레저사업 등록증</p> <p>나. 수상레저사업 등록 신청 시 제출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서류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된 서류</p> | <p>수수료</p> <p>등록: 20,000원</p>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주민등록표 초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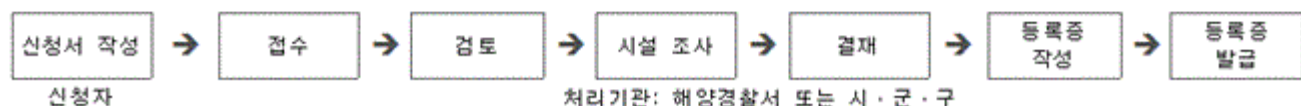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 × 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 25호서식]

(앞쪽)

등록번호 제 호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
 []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거나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사업장의 위치

영업구역

수상레저기구 명세

사업기간

영업시간

요금

종사자

명

안전요원

명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해양경찰서장

시장·군수·구청장 [인]

210mm×297mm [백상지 120g/m²]

(뒤쪽)

변경 및 처분 사항

등록번호 제 호

| 연월일 | 내용 | 확인 |
|-----|----|----|
| | |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수상레저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5일 |
| 신청자 | 상호(명칭) | | |
|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 | 주소 | | |

사업장의 위치

| | | |
|--------------|------|------|
| 변경
사
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 |
| | | |
| | | |

변경 사유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제출서류 | 1.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10,000원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주민등록표 초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 |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검토 | → | 결재 | → | 등록증
작성 | → | 등록증
발급 |
|--------|---|----|---|----|---|----|---|-----------|---|-----------|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경찰서 또는 시·군·구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수상레저사업 []휴업 []폐업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일 |
| 신고인 | 상호(명칭) | |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 주소
(전화번호:) | | |
| 사업장의 위치 | | | |
| 영업구역 | | | |
| 수상레저기구 명세 | | | |
| 신고사항 | 휴업일(폐업일) | | |
| | 휴업(폐업) 사유 | | |

「수상레저안전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상레저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제출서류 |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원본 | 수수료
없음 |
|------|---------------|-----------|

210mm × 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수상레저사업 재개업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7일 |
|------|------|------|----|

| | | | |
|-----|----------------|------|--|
| 신고인 | 상호(명칭) | |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 주소
(전화번호:) | | |

사업장의 위치

영업구역

수상레저기구 명세

재개업 사유

「수상레저안전법」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상레저사업의 재개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제출서류 | <p>1. 수상레저 사업을 재개업하는 경우
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구역에 관한 도면
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나목에 따른 시설기준 명세서
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다목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자와 종사자의 명단 및 해당 면허증 사본(면허증 사본의 경우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라.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 명세서
마.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사목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의 명단과 해당 자격증 사본
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 또는 같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사본</p> <p>2. 육상에서 보관하는 서프보드·윈드서핑·카이트보드 또는 패들보드를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수상레저사업(빌린 사람이 빌린 수상레저기구를 직접 가져가거나 이동시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을 재개업하는 경우
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가목에 따른 시설기준 명세서
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나목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명세서</p> | 수수료
20,000원 |
|------|---|----------------|

| |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p>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주민등록표 초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p>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 | | | | | | | | | | | | |
|--------|---|----|---|----|---|--------|---|----|---|--------|---|--------|
| 신고서 작성 | → | 접수 | → | 검토 | → | 적합성 검토 | → | 결재 | → | 등록증 작성 | → | 등록증 발급 |
|--------|---|----|---|----|---|--------|---|----|---|--------|---|--------|

신고인

처리기관: 해양경찰서 또는 시·군·구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이용요금 []신고서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 상호(명칭) | |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 주소
(전화번호:) | | |
| 사업장의 위치 | | | |
| 영업구역 | | | |
| 수상레저기구 명세 | | | |
| 탑승 구간 또는
대여 시간 | 탑승 구간
~ | 대여 시간
시간 | |
| 탑승료 | 대인 | | |
| | 소인 | | |
| | 기타 | | |
| 대여료 | | | |
| 적용일 | | | |
| 변경 사유 | | | |

「수상레저안전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요금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 × 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서

| | | |
|-------------------------|--------------------------|--------------------|
| 수상레저
사업자 | 상호(명칭) |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 명령
사항 | 수상레저기구·시설 또는 장비의 명칭 및 종류 | 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 |
| | 정비 불량 또는 훼손 내용 | |
| | 의무사항 | |
| | 시정기한 | 원상복구 명령 이행계획서 제출기한 |

「수상레저안전법」 제43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상레저기구 또는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령합니다.

※ 위 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해양경찰서장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 이행계획서

| | | |
|-------------------------|--------------------------|-------------|
| 제출인 | 상호(명칭) |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 소

(전화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 이행계획
사항 | 수상레저기구·시설 또는 장비의 명칭 및 종류 | 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 |
| | 정비 및 원상복구 내용 | |
| | 이행완료기한 | 소요 비용 |
| | 정비 불량 또는 훼손 원인 | |

「수상레저안전법」 제43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상레저 기구 또는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 32호서식]

수상레저기구 사용정지명령서

| | | |
|--------------------------------|----------------|------|
| 소유자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상호(명칭) | |
| | 주소
(전화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 위반 사항 | 일시 | |
| | 장소 | |
| | 내용 | |
| 사용정지 기간
. . . ~ . . . (일간) | | |

「수상레저안전법」 제43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상레저기구의 사용정지를 명령합니다.

※ 위 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해양경찰서장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수상레저기구 사용정지표지

1. 수상레저기구의 명칭 및 종류:
2. 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

위 수상레저기구에 대해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에 따라 사용정지를 명령합니다.

해양경찰서장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주 의 사 항

1. 이 표지는 수상레저기구의 앞면·뒷면·왼쪽면 또는 오른쪽면의 잘 보이는 곳에 각각 붙여야 합니다.
2. 이 표지를 훼손하거나 그 부착 위치를 변경해서는 안 되며, 「수상레저안전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기 전까지는 이 표지를 임의로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 비고: 바탕은 흰색으로, 제목은 붉은색으로, 글자는 검정색으로 표시한다.

134mm × 190mm [백상지 150g/㎡]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 2024. 2. 15.] [법률 제19225호, 2023. 2. 14.,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044 - 205 - 4267

제1장 총칙 <개정 2011. 5. 30.>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선사업(遊船事業) 및 도선사업(渡船事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22.>

1. “유선사업”이란 유선 및 유선장(遊船場)을 갖추고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遊樂)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선사업”이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유선장” 및 “도선장”이란 유선 및 도선(이하 “유·도선”이라 한다)을 안전하게 매어두고 승객이 승선·하선을 할 수 있게 한 시설과 승객 편의시설을 말한다.
4. “수상”이란 내수면과 해수면을 말한다.
5.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淡水)와 기수(汽水)의 수류(水流) 또는 수면을 말한다.
6. “해수면”이란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의2(적용배제)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7. 24., 2018. 3. 27., 2022. 1. 4.>

1.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5.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중레저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6. 「항로표지법」에 따른 항로표지(사설항로표지를 포함한다)의 설치·관리, 위탁관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2. 2. 22.]

제3조(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①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이하 “유·도선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면허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2. 22., 2014. 11. 19., 2016. 1. 7., 2017. 7. 26.>

1. 유선장 및 도선장(이하 “유·도선장”이라 한다) 또는 영업구역이 내수면과 해수면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유·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
2.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다만, 영업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고 운항거리가 5해리 이상인 경우에는 시·도지사, 운항거리가 5해리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유·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3.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해당 유·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4. 서울특별시의 한강에서 운항하는 유·도선의 경우: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 중 유·도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면허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은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受理)할 때에 그 영업구역이 내수면과 해수면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유·도선장이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③ 관할관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7.>

④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수리여부를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고의 경우 7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 5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3. 27.>

⑤ 관할관청은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서장, 공원관리청, 경찰서장, 지방해양항만관서의 장과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도선사업만 해당한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4.,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18. 3. 27.>

⑥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발급할 때에 유·도선의 안전강화 및 편의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5. 7. 24., 2017. 7. 26., 2018. 3. 27.>

[전문개정 2011. 5. 30.]

제3조의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 의제) ① 유선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유선사업과 관련된 업(이하 “일반관광유람선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유선사업의 면허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일반관광유람선업의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나 신고를 받은 경우 유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일반관광유람선업 등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완료된 경우 유선사업의 면허를 발급받은 자나 신고가 수리된 자(이하 “유·도선사업자”라 한다)는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일반관광유람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관할관청은 유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7. 24.]

제3조의3(사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도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유·도선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로 한정한다)

2. 유·도선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유·도선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유·도선사업의 시설과 설비를 전부 인수한 자는 유·도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개정 2016. 12. 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도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7.>

⑤ 관할관청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3. 27.>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계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하여 임명한 경우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유·도선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5. 7. 24.]

제4조(시설기준 등) 유·도선사업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과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4조의2(면허의 기준) ① 관할관청은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면허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유·도선사업 면허 신청자가 보유한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船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유·도선사업 면허 신청자가 보유한 선박과 시설·장비·인력이 제4조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② 관할관청은 유·도선사업을 신고하려는 자가 보유한 선박의 선령이 제1항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15. 2. 3.]

제5조(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 ① 제3조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연중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로만 하며, 도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은 영구로 하되, 연중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개정 2012. 2. 22.>

② 제1항에 따른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갱신받거나 신고를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른 갱신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3. 27.>

④ 관할관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3. 27.>

[전문개정 2011. 5. 30.]

제6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2016. 1. 7., 2017. 1. 17., 2023. 7. 25.>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 「선박안전법」, 「선박법」, 「선박직원법」, 「선원법」, 「해상교통안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선박안전법」, 「선박법」, 「선박직원법」, 「선원법」, 「해상교통안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9조제1항에 따라 유·도선사업의 면허가 취소(이 항 제1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유·도선사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사업이 폐쇄(이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사업이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고는 제3조에 따른 유·도선사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개정 2016. 1. 7.>

[전문개정 2011. 5. 30.]

제7조(유·도선사업의 휴업·폐업 등) ① 유·도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7., 2017. 7. 26.>

1.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선박의 일부를 운항중단하려는 경우
2. 휴업기간 또는 운항중단기간 중 사업 또는 운항을 재개하려는 경우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폐업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3. 27.>

③ 관할관청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3. 27.>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폐업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3. 27.>

⑤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업의 경우 휴업기간은 도선의 경우는 계속하여 6개월, 유선의 경우는 계속하여 1년을 넘을 수 없다.<개정 2016. 1. 7., 2018. 3. 27.>
[전문개정 2015. 7. 24.]

제8조(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등) ① 유·도선의 영업구역은 선박의 톤수 및 성능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30.>

② 유·도선의 영업시간은 해 뜨기 전 30분부터 해 진 후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운항에 필요한 조명시설 등 안전운항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해뜨기 전 30분 이전 또는 해 진 후 30분 이후에도 영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1. 5. 30., 2015. 7. 24.>

③ 제1항과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5. 30.>

1.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2. 공공 목적으로 운항이 필요한 경우
3. 삭제 <2015. 7. 24.>

④ 유·도선은 기상특보(「기상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발효 시 운항할 수 없다.<신설 2016. 1. 7., 2023. 2. 14.>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항해구역 중 평수구역(平水區域)(평수구역이 없는 해수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해수면을 말한다)에서 운항하는 유·도선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기상특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특보에 한정한다) 발효 시에도 운항할 수 있다.<개정 2016. 1. 7., 2017. 7. 26.>

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제5항에 따라 운항이 허용된 경우에도 해당 영업구역의 실제 기상상태를 확인하여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유·도선의 운항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6. 1. 7., 2017. 7. 26.>

[제목개정 2011. 5. 30.]

제9조(행정처분) ① 관할관청은 유·도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사업의 폐쇄 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5. 2. 3., 2016. 1. 7., 2016. 12. 27., 2017. 1. 17.>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인이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하여 임명한 경우

나. 유·도선사업자의 상속인이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유·도선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

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2의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기간의 만료,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기간의 만료 및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만, 공유수면 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기간의 연장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유예하여야 한다.

3. 유·도선사업자, 선원(인명구조요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 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피해보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선박안전법」, 「선박법」, 「선박직원법」, 「물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6. 제3조제1항, 제3조의3제3항, 제7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7. 제27조 각 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의2. 제12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선 또는 도선을 조종한 경우

8.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선령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도선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폐쇄 또는 정지를 명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제3조의3에 따른 유·도선사업의 승계가 있는 경우 종전의 유·도선사업자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위반을 사유로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유·도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유·도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개정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

제9조의2(과징금 처분) ① 관할관청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6. 1. 7.>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3. 8. 6., 2020. 3. 24.>

[전문개정 2011. 5. 30.]

제10조(관계 기관에의 통보) 관할관청은 제7조에 따른 휴업·폐업 등의 신고를 받았을 때와 제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제3조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5. 30.]

제2장 유선사업 <개정 2011. 5. 30.>

제11조(승선 정원의 기준) 관할관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선 중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선의 승선 정원을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30.]

제12조(유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① 유선사업자와 선원은 선박의 안전을 점검하고 기상 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승객에게 위해(危害)가 없도록 수면(水面)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유선을 조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유선사업자와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유선장 및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선의 선실이나 통로에 비치하고 출항하기 전에 승객에게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1. 안전한 승선·하선의 방법
2. 선내 위험구역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3. 인명구조장비의 위치 및 사용법
4. 유사 시 대처요령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에 관한 사항

③ 유선사업자와 선원은 음주, 약물중독,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선을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음주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란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1. 6. 15., 2012. 2. 22., 2023. 7. 25.>

④ 유선사업자와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 유선의 경우에는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5. 7. 24.>

⑤ 유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는 유선 및 유선장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2. 22., 2015. 7. 24., 2016. 1. 7., 2016. 5. 29.>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4세 미만의 사람, 술에 취한 사람(제6호 단서에 따른 유선에 승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으로서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보호자가 동승(同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말이나 행동이 상당히 수상하다고 의심되는 사람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에게 유선을 대여하거나 승선하게 하는 행위

2.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하게 하는 행위
3. 요금 외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운항을 기피하는 행위
5. 무리하게 승선을 권유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선 또는 선박 대여를 거부하는 행위
6. 유선 내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선 내에 주류를 반입하게 하는 행위.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제3조의2에 따라 일반관광유람선업 등록이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관광유람선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도박, 고성방가 또는 음란행위 등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8. 영업시간 외에 항행하거나 영업구역 외 또는 항행구역(배를 매어두는 장소와 영업구역이 격리되어 있는 경우의 그 구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에서 항행하는 행위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일반 승객과 함께 반입하거나 운송하는 행위(위험물 보관시설 등 격리시설을 설치하여 선원 등 종사자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수상에 유류·분뇨·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1. 유선의 운항 중 구명조끼, 구명부환(救命浮環), 구명줄 등 인명구조용 장비나 설비에 잠금장치를 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1. 5. 30.]

제13조(유선 승객의 준수사항) ① 유선의 승객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운항질서의 유지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유선의 승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 2. 22., 2015. 7. 24.>

1.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2. 유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의 구명조끼 착용 지시나 그 밖에 안전운항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또는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
3. 제12조제5항제6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선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그 밖에 선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4. 인명구조용 장비나 그 밖의 유선 설비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
5. 제12조제5항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
6. 조타실(操舵室), 기관실 등 선장이 지정하는 승객출입 금지장소에 선장 또는 그 밖의 종사자의 허락 없이 출입하는 행위

③ 승객이 유선을 빌려 스스로 유선을 조종하는 경우에 그 승객에 대하여는 제12조제3항, 같은 조 제5항제6호 및 제8호를 준용한다.<개정 2012. 2. 22.>

④ 승객이 유선을 빌려 스스로 조종하는 경우에 해당 유선을 조종하는 승객은 유선장과 연락 가능한 통신장비를 휴대하고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7.>
[전문개정 2011. 5. 30.]

제3장 도선사업 <개정 2011. 5. 30.>

제14조(승선 정원, 적재 중량 등의 기준) 관할관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 중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도선의 승선 정원 및 적재 중량과 용량을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30.]

제15조(운항 준비 및 운항 거부 금지) ① 도선사업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도선을 운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② 도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객의 출선(出船) 요구를 거부하거나 출선을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1. 폭풍우, 홍수, 그 밖의 사유로 운항이 위험한 경우
2. 해당 운항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반하는 경우
3. 선체(船體)의 고장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1. 5. 30.]

제16조(도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① 도선사업자와 선원은 선박의 안전을 점검하고 기상 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승객과 적재물에 위해가 없도록 수면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도선을 조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선사업자와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도선장 및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선의 선실이나 통로에 비치하고 출항하기 전에 승객에게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27.>
1. 안전한 승선·하선의 방법
2. 선내 위험구역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3. 인명구조장비의 위치 및 사용법
4. 유사 시 대처요령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에 관한 사항
③ 도선사업자와 선원은 음주, 약물중독,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선을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음주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란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한다.<개정 2011. 6. 15., 2012. 2. 22., 2023. 7. 25.>
④ 도선사업자와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 도선의 경우에는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2.,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

제17조 삭제 <1999. 1. 18.>

제18조(승선 또는 선적의 제한 등) ① 도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는 도선과 도선장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2. 22., 2016. 1. 7.>

1. 승선 정원, 적재 중량 또는 용량을 초과하여 승선시키거나 선적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승선을 거부하는 행위
3. 운임 외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4. 도선 내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도선 내에 주류를 반입(운송을 목적으로 싣는 것은 제외한다)하게 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음란행위나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6. 영업시간 외에 항행하거나 영업구역 외 또는 항행구역 외에서 항행하는 행위
7. 수상에 유류, 분뇨,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8. 도선의 운항 중 구명조끼, 구명부환, 구명줄 등 인명구조용 장비나 설비에 잠금장치를 하는 행위

② 도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물건을 일반 승객 또는 물건과 함께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험물 보관시설 등 격리시설을 설치하여 선원 등 종사자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 29.>

1. 감염병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으로서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보호자가 동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시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인화물질 등 위험물
4.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

[전문개정 2011. 5. 30.]

제19조(도선 승객의 준수사항) ① 도선의 승객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운항질서의 유지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도선의 승객에 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선사업자”는 “도선사업자”로, “유선”은 “도선”으로 보며, 제13조제2항제3호 중 “제12조제5항제6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선”은 “제18조제1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선”으로 본다. <개정 2012. 2. 22.>

[전문개정 2011. 5. 30.]

제4장 안전검사 및 안전관리 <개정 2011. 5. 30.>

제20조(안전검사) ① 유·도선사업자는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시기·절차·검사기준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1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매년 유·도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유·도선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30.]

제22조(인명구조용 장비의 비치 등) ① 유·도선사업자는 유·도선의 사고 시에 대비할 수 있는 인명구조용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인명구조요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3조(선원의 정원·자격 및 명부 등) ① 「선박직원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도선 선원의 정원 및 자격기준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유·도선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소 안에 선원의 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30.]

제24조(유·도선사업자 등의 안전교육) ① 유·도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도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유·도선사업자는 선원 및 그 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선원 및 그 종사자를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2. 3.>

[전문개정 2011. 5. 30.]

제24조의2(선원 등의 비상상황 대비훈련) ① 유·도선사업자는 유·도선에 승선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선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비상상황 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선원

2. 그 밖의 종사자

② 제1항에 따른 비상상황 대비훈련의 종류, 주기 등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1. 7.]

제25조(출항·입항의 기록·관리 등) ① 유·도선사업자는 유·도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휴업·휴지 중인 유·도선을 포함한다)의 출항·입항[내수면의 경우에는 출선 및 귀선(歸船)을 말한다] 시에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항·입항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선박을 운항하는 유·도선사업자는 그 선박에 승선하는 승객이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2017. 7. 26.>

③ 유·도선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하려는 승객의 신분과 제2항에 따른 승선신고서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2018. 3. 27.>

④ 유·도선사업자는 승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신분확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2018. 3. 27.>

⑤ 유·도선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승선신고서를 3개월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

[제목개정 2015. 7. 24.]

제25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출항·입항의 기록·관리 및 승선신고서 작성·제출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이용 대상·방법 등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7.]

제26조(검사 등) ① 관할관청은 유·도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도선 및 유·도선장에 대하여 검사 또는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 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항목과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7조(개선명령 등) 관할관청은 유·도선의 안전사고 예방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도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2018. 3. 27.>

1. 승선 정원이나 적재 중량 또는 용량의 제한
2. 영업시간 또는 운항횟수의 제한
3. 영업구역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 정지
4. 유·도선 또는 유·도선장시설의 개선·변경 및 원상복구
5. 운항 약관의 변경
6. 제3조제6항에 따라 유·도선사업 면허 발급 시 붙인 조건의 이행
7.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 등의 유지·관리
8. 제7조제5항에 따른 휴업기간 초과 시 영업재개
9. 제33조에 따른 보험 등예의 가입
10.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 5. 30.]

[제목개정 2015. 7. 24.]

제28조(사고발생 시의 인명구조 의무) 유·도선사업자와 선원은 선박이 전복·충돌하거나 그 밖에 영업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9조(사고발생의 보고) ① 유·도선사업자와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접 시장·군수·구청장과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승객이 사망하거나 실종되거나 중상자가 발생한 때 및 승객 중에 감염병으로 인정되는 환자가 있는 경우
2. 충돌, 좌초,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선체가 심하게 손상되는 등 선박 운항에 장애가 생긴 경우
3. 교량, 수리시설, 수표(水標), 입표(立標), 호안(護岸), 그 밖에 수면에 설치된 인공구조물을 파손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과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인명구조 활동 등 사고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30.]

제30조(관계 기관의 협조)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서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유·도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30.]

제30조의2(유·도선안전협회의 설립) ① 유·도선사업자는 유·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 및 유·도선의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도선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7. 7. 26.>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 7. 26.>

1. 유·도선 안전 및 유·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개발
2. 유·도선 안전을 위한 홍보 및 교육훈련
3. 유·도선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4.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협회는 제4항 각 호의 사업 외에 제33조에 따른 승객·선원·종사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⑥ 협회가 제5항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만들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7. 26.>

⑦ 협회의 정관·업무·회원자격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31조(운항규칙) ① 「해상교통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도선의 운항규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6. 15., 2023. 7. 25.>

② 유·도선사업자와 선원은 운항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5장 보칙 <개정 2011. 5. 30.>

제32조(운항약관) ① 유·도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약관을 정하여 사업면허의 신청 또는 사업신고를 할 때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운항약관에는 유·도선의 승객·수하물 및 소하물의 운송 조건, 운송에 대한 유·도선사업자의 책임,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7. 7. 26.>

③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7.>

④ 관할관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3. 27.>

[전문개정 2011. 5. 30.]

제33조(보험 등에의 가입) ① 유·도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객, 선원, 그 밖의 종사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7.>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및 가입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7.>

[전문개정 2011. 5. 30.]

제34조(요금 및 운임) ① 유선사업자는 승선료 또는 선박 대여료를 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선사업자는 운임을 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관할관청은 제36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는 도선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운임을 신고한 경우 그 도선사업자에 대하여 낙도(落島) 또는 수몰지역, 그 밖에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도선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지역주민들의 운임을 일반 승객보다 낮게 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35조(요금 등의 게시) 유·도선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도선 및 유·도선장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2. 승선 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4. 제13조 및 제19조에 따른 승객의 준수사항
5.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
6.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

[전문개정 2016. 1. 7.]

제36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도선의 안전운항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세 도선사업자의 노후 선박의 교체,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선,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 7.>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이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선령에 가까워져서 유선 또는 도선을 새로 건조(建造)하려는 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선 또는 도선의 건조에 드는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신설 2016. 1. 7.>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7.>

[전문개정 2011. 5. 30.]

[제목개정 2016. 1. 7.]

제36조의2(손실보상을 위한 조치 등) ① 관할관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육지와 도서 간의 연륙교(連陸橋) 또는 도서와 도서 간의 연도교(連島橋) 건설에 따라 도선사업자가 손실을 입은 때에는 해당 도선사업자가 제3조에 따른 면허 또는 신고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선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 2. 22.]

제37조(청문) 관할관청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유·도선사업의 면허취소·사업폐쇄 또는 사업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전문개정 2011. 5. 30.]

제38조(권한의 위임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관할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검사업무 및 제24조에 따른 교육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6장 벌칙 <개정 2011. 5. 30.>

제39조(벌칙) ① 제28조를 위반하여 유·도선사업자와 선원이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본조신설 2015. 2. 3.]

[종전 제39조는 제40조로 이동 <2015. 2. 3.>]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22., 2014. 10. 15., 2015. 2. 3., 2016. 1. 7.>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도선사업을 한 자

2. 제9조제1항에 따라 유·도선사업이 폐쇄 또는 정지된 후 유·도선사업을 한 자

3. 제12조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선 또는 도선을 조종한 자

5. 제12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정원을 초과하여 유선에 승선하게 한 자

6. 제1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승선 정원, 적재 중량 또는 용량을 초과하여 도선에 승선 또는 선적하게 한 자

7.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유·도선을 운항한 자

8.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9.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전문개정 2011. 5. 30.]

[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40조는 제41조로 이동 <2015. 2. 3.>]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22., 2016. 1. 7.>

1. 제8조제4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기상특보 발효 시 유·도선을 운항하거나 유·도선의 운항제한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5항제1호·제3호부터 제9호까지(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1호, 제1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제8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자

3. 제2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1. 5. 30.]

[제40조에서 이동, 종전 제41조는 제42조로 이동 <2015. 2. 3.>]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

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2. 3.>

[전문개정 2008. 12. 26.]

[제41조에서 이동, 종전 제42조는 제43조로 이동 <2015. 2. 3.>]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2. 22., 2015. 2. 3., 2016. 1. 7., 2018. 3. 27.>

1. 제7조제1항, 제12조제4항, 제12조제5항제10호, 제15조제2항, 제16조제4항, 제18조제1항제7호, 제23조제2항, 제24조의2제1항, 제25조, 제29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1항·제2항 또는 제35조를 위반한 자
2. 제13조제2항(제1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3. 제12조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비치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42조에서 이동 <2015. 2. 3.>]

부칙 <제4610호, 1993.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고 기타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등 행정기관이 행한 신고의 수리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운항약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신고를 한 유·도선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운항약관의 인가신청,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관계서류의 제출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선료·대선료 또는 운임의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에 의한 유·도선에 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 12. 17., 2007. 1. 3.>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선및도선업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법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153호, 1996. 8. 8.>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유선및도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및 제30조 전단중 “지방해운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 제8조제4항 후단, 제9조제3항, 제11조, 제14조, 제23조, 제25조 및 제37조 본문중 “내무부령”을 각각 “내무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1조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내무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⑭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부칙 <제5204호, 1996. 12. 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선원의 교체·해고등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한 보고사항부터 적용한다.

③(운항약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유·도선사업자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운항약관에 정하여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요금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은 유선의 승선료 또는 대선료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453호, 1997. 12. 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 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부칙 <제5470호, 1997. 12. 17.> (선박안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유선및도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조제1항중 “ 선박안전법 제2조제2항제3호 후단 ” 을 “ 선박안전법 제1조의2제6호 ” 로 한다.

부칙 <제5629호,1999. 1. 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운항약관의 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항약관의 인가를 받았거나 운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32조제1항 및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각각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186호,2004. 3. 11.>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7항, 、 、 、 <생략> 、 、 、 부칙 제4조(제9항을 제외한다) 、 、 、 <생략> 、 、 、 이 법 공포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유선및도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 을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 ” 으로 한다.

⑪내지 ⑭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7412호,2005. 3. 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제3조의3 및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비상구조선의 안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428호,2005. 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6>생략

<87>유선및도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 파산자 ” 를 “ 파산선고를 받은 자 ” 로 한다.

<88>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985호,2006. 9. 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21호,2007. 1. 3.> (선박안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4610호 유선및도선사업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중 “ 선박안전법 제2조제2항제3호 ” 를 “ 「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 ” 로 한다.

⑦및 ⑧생략

부칙 <제8260호,2007. 1. 19.> (해양환경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중 “ 해양오염방지법 ” 을 “ 「해양환경관리법」 ” 으로 한다.

⑫내지1& 생략

제24조 생략

부칙 <제8343호,2007. 4. 11.> (관광진흥법)**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6호 단서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⑮ 내지 28 생략

제12조 생략**부칙 <제8380호,2007. 4. 11.> (해상교통안전법)****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내지 제4조 생략**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후단 및 제16조제2항 후단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의2제5항”을 각각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제5항”으로 한다.

④ 생략

제6조 생략**부칙 <제8852호,2008. 2. 29.> (정부조직법)****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 、 <생략> 、 、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2> 까지 생략

<213>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7조, 제9조제3항, 제9조의2제2항, 제11조, 제14조, 제23조제1항·제2항 및 제25조 중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21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095호,2008. 6. 5.>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종전의 규정에 따른 면허·신고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9203호,2008. 12.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47호,2009. 12. 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1^ 부터3)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0432호,2011. 3. 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53호,2011. 5.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01호,2011. 6. 15.> (해사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후단 및 제16조제2항 후단 중 “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제5항 ”을 각각 “ 「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 ”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 「해상교통안전법」 ”을 “ 「해사안전법」 ”으로 한다.

⑪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1344호, 2012. 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8>까지 생략

<239>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7조, 제9조제3항, 제9조의2제2항, 제11조, 제14조, 제23조제1항·제2항 및 제25조 중 “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 ”을 각각 “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한다.

<24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998호, 2013. 8. 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 까지 생략

<5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 중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를 “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로 한다.

<52>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2248호, 2014. 1. 14.> (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도로법」 제20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85>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798호, 2014. 10. 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44호, 2014. 11. 1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2>까지 생략

<15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직할해양경찰서의 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본문 중 “해양경찰서장(직할해양경찰서의 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9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 전단 및 제38조제1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단서, 같은 조 제2항·3항, 제8조제5항 단서, 제9조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0조 전단 및 제38조제1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단서 중 “해양경찰서의”를 “해양경비안전서의”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 제9조제3항, 제9조의2제2항, 제11조, 제14조, 제23조제1항·제2항 및 제25조 중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의 유·도선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15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064호, 2015. 1.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93호, 2015.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선·도선의 선령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 및 제9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면허를 받거나 신고하는 유·도선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미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유·도선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유·도선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7년 이내에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유·도선사업의 유효기간이 이 법 시행 후 7년 이내에 종료되어 면허 또는 신고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7년 이내에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441호, 2015. 7.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시 협의 또는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도선사업의 면허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유·도선사업 휴업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휴업 중인 유·도선사업자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업기간을 계산한다.

제4조(운항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항약관을 정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한 유·도선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맞게 운항약관을 변경하여 제3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3751호, 2016. 1.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7호의2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당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권한 주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영업구역이 둘 이상의 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고 운항거리가 5해리 이상인 경우의 유·도선사업 면허 및 신고의 관할관청으로서 지방해양경찰청장이 한 면허발급, 신고수리, 그 밖의 행위와, 해당 지방해양경찰청장에 대한 면허신청, 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제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이 한 행위 또는 해양경찰서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개정 2017. 7. 26.>

제4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항1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에 대해서는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224호, 2016. 5. 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제1호 및 제18조제2항제1호 중 “「정신보건법」”을 각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1& 부터2@ 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14476호, 2016. 12. 27.> (지방세징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3^ 까지 생략

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 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480호, 2016. 12. 27.> (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 까지 생략

4\$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의2 본문 중 “목적 외 사용기간의”를 “사용기간의”로 한다.

4% 부터 <65>까지 생략

부칙 <제14532호, 2017. 1. 17.> (물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9조제1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56>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2>까지 생략

<27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9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 전단 및 제38조제1항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8조제6항, 제9조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0조 전단 및 제38조제1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

경찰서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제25조의2제1항, 제30조의2제3항, 같은 조 제4항제5호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3751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중 “해양경비안전서의”를 “해양경찰서의”로,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27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527호, 2018. 3.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 제16조제2항 및 제4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도선사업의 신고·변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제4항, 제3조의3제4항·제5항, 제5조제3항·제4항, 제7조제2항·제3항 또는 제32조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091호, 2020. 3. 24.>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76>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683호, 2022. 1.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25호, 2023. 2. 14.> (기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기상법」 제14조에 따른 기상특보”를 “「기상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 <제19573호, 2023. 7. 25.> (해상교통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1조제1항 중 “「해사안전법」”을 각각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하고, 제12조제3항 후단 및 제16조제3항 후단 중 “「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을 각각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으로 한다.

⑮부터 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 3. 26.] [대통령령 제35396호, 2025. 3. 25.,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044 - 205 - 4267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29.]

제2조(바다목)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

1. 내수면과 해수면이 접하는 하구나 해안과 해안을 잇는 만(灣)의 형태를 갖춘 해역
2. 육지와 도서(島嶼) 간 및 도서와 도서 간의 거리가 비교적 가깝고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해역(여객선이 운항되고 있는 도서 중 한 곳과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다른 도서 간의 해역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2. 6. 29.]

제3조(면허·신고사업의 구분) ①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이하 “유·도선사업”이라 한다) 중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유선 및 도선(이하 “유·도선”이라 한다)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도선사업으로 한다.

1. 총톤수가 5톤 이상인 선박
2. 총톤수가 5톤 미만인 선박 중 승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
3. 유·도선사업의 영업구역이 2해리 이상인 경우

②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유·도선사업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도선사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29.]

제4조(사업의 면허신청 또는 신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유·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5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선박 및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관청(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에 면허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2. 6. 29.]

제4조의2(면허 발급 및 신고 수리의 통보) 법 제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 9. 28.>

1. 지방환경관서

2. 육군 및 해군의 사단급 이상 부대

[전문개정 2016. 1. 22.]

제4조의3(관광산업 등록 의제를 위한 의견제출기간) 법 제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협의의 요청받은 날부터 5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1. 22.]

제5조(시설기준) ① 법 제4조에 따른 유선사업의 선박기준 및 시설·장비·인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선박기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추는 것. 다만,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선박이어야 한다.
2. 시설·장비·인력 기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 가. 제17조에 따른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시설기준에 맞는 장비와 시설을 갖추는 것
 - 나. 「선박직원법」에 적합한 선원을 배치할 것. 다만, 「선박직원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선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제20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할 것

② 법 제4조에 따른 도선사업의 선박기준 및 시설·장비·인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기준: 제1항제1호에 따른 선박을 갖추는 것
2. 시설·장비·인력 기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 가. 제18조에 따른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시설기준에 맞는 장비와 시설을 갖추는 것
 - 나.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선원을 배치할 것
 - 다. 제20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할 것

[전문개정 2012. 6. 29.]

제6조(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기준)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船齡)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2. 3.]

제7조(영업구역)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유·도선의 영업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안전법」을 적용받는 유·도선의 경우에는 선박검사 시에 정해진 항해구역 내에서 관할관청이 지정한 구역 또는 거리 이내
 2.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도선의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안전검사 시에 정해진 구역 또는 거리 이내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유·도선의 영업구역 내에 중간 기착지(寄着地)를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 1. 22.>

1. 중간 기착지로 인하여 「해운법」에 따른 해상운송여객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것
2. 유선사업의 경우 중간 기착지로 인하여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목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없을 것

[전문개정 2012. 6. 29.]

제8조(야간운항에 필요한 안전운항 시설 및 장비)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받은 자나 신고가 수리된 자(이하 “유·도선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 뜨기 전 30분 이전 또는 해 진 후 30분 이후 유·도선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유·도선 등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 1. 5.>

1. 해당 유·도선: 다음 각 목의 모든 장비
 - 가. 전등 1개 이상
 - 나. 자기점화등 1개 이상
 - 다. 등(燈)이 부착된 승선 정원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
2. 해당 유선장 또는 도선장(이하 “유·도선장”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모든 시설 및 장비
 - 가. 자기점화등 1개 이상
 - 나. 승선장 및 하선장에 각각 100럭스 이상의 조도(밝기)를 갖춘 조명시설

[전문개정 2016. 1. 22.]

제9조(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할 수 있는 해수면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별표 2에 따른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할 수 있는 해수면의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6. 2. 3., 2016. 7. 6.>

② 법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특보”란 「기상법 시행령」 제9조제4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해양기상특보(주의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 2. 6.>

[본조신설 2016. 1. 22.]

[제목개정 2016. 7. 6.]

제10조(소형 유·도선)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 유선” 및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 도선”이란 각각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중 관할관청이 해당 영업구역의 수심(水深)、수세(水勢)、운항거리 등을 고려하여 승객 등 승선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6. 29.]

제11조(주류의 판매·반입 등) 법 제12조제5항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 및 법 제18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선”이란 각각 길이 24미터 이상으로서 총톤수 50톤 이상인 선박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6. 29.]

제11조의2(폭발물·인화물질 등 위험물) 법 제12조제5항제9호 및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인화물질 등 위험물”이란 화약·폭약·탄약 등 폭발물, 고압가스 및 인화성 액체류로서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2. 6. 29.]

제12조(안전검사) ① 유·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면허신청 또는 신고 시에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유·도선사업자는 유·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의 선체구조를 변경하거나 기관을 교체하였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③ 유·도선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후 1년마다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후 30일 이내에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면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선박의 구조도면 1부(구조가 같은 선박이 2척 이상일 경우에는 그 대표되는 선박의 구조도면 1부만 제출한다)

2. 인명구조용 장비에 대한 명세서 1부

⑤ 제4항에 따른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그 신청 내용이 제13조에 따른 안전검사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선박마다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증을 선박 안의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나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⑦ 제6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는 수입증지 또는 수입인지로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 6. 29.]

제13조(안전검사의 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 안전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2. 3., 2017. 7. 26.>

1. 제14조 및 별표 1에 따른 유·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과 선령기준에 맞는지 여부

2.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시설기준에 맞는지 여부
3.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승선 정원, 적재 중량, 적재 용량 및 선원 정원에 맞는지 여부

[전문개정 2012. 6. 29.]

제14조(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 ①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의 안전검사를 위한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2. 3.>

1. 선박(제2항에 따른 고시로 정하는 선박은 제외한다)의 길이가 깊이의 10배 또는 너비의 6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선체의 내부식성(耐腐蝕性)과 강도를 유지할 것
3. 추진기관이 설치된 선박의 경우 조타(操舵)장치가 유효하게 작동하고, 기관은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쉽고 확실하게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점검과 보수가 쉬울 것

② 제1항에 따른 규격 등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안전운항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설비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2. 6. 29.]

제15조 삭제 <2016. 2. 3.>

제16조 삭제 <1999. 3. 31.>

제17조(유선의 인명구조용 장비 등)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유선사업자가 유선 및 유선장에 갖추어야 하는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2., 2021. 1. 5.>

1. 유선에는 승선 정원의 1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구명조끼 중 승선 정원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는 소아용으로 하여야 한다)를 갖추는 것
2. 유선장에 유선(5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제6호에 따른 장비를 갖춘 유선은 제외한다)이 30척 이하인 경우에는 1척 이상, 31척 이상 50척 이하인 경우에는 2척 이상, 51척 이상인 경우에는 50척을 초과하는 50척마다 1척씩 더한 수 이상의 비상구조선을 갖추는 것
3. 승선 정원이 5명 이상이거나 추진기관을 설치한 유선에는 그 승선 정원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救命浮環)을 갖추는 것. 다만, 승선 정원의 50퍼센트 이상(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는 25퍼센트 이상)을 태울 수 있는 수의 구명정(救命艇), 구명뗏목 또는 구명부기(救命浮器)를 갖춘 경우에는 승선 정원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으로 한다.
4. 승선 정원이 13명 이상인 유선에는 유선마다 지름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 1개 이상이나 드로우 백(throw bag) 1개 이상을 갖추는 것

5. 유선장에는 노도(櫓棹)가 있는 유선 수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선박에 필요한 예비 노도를 갖추 것
 6. 2해리 이상을 운항하는 유선에는 유선장 또는 가까운 무선국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 것
 7.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유선(2해리 미만을 운항하는 유선의 경우에는 추진기관을 설치한 유선 중 야간운항을 하는 유선만 해당한다)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하여 위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갖추 것
 8. 승선 정원이 13명 이상인 유선에는 유선마다 선실·조타실 및 기관실별로 1개 이상의 소화기를 갖추 것
 9. 유선장에는 유선을 안전하게 매어두는 시설과 승객의 승선·하선에 필요한 1개 이상의 구명부환을 갖춘 승강장 설비를 갖추 것
 10. 유선장에는 승객이 이용하기에 적절한 규모의 대기시설, 매표소, 화장실을 갖추 것
 11. 삭제 <2016. 1. 22.>
 12. 잠수를 영업 수단으로 하는 유선의 유선장에는 그 영업에 적절한 규모의 해상선착장과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검사에 합격한 승객운송선 및 비상구조선을 갖추 것
 - ② 제1항제2호 및 제12호의 비상구조선은 승선 정원 4명 이상, 시속 20노트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하며, 영업구역의 순시와 사고발생 시의 인명구조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망원경 1개
 2. 자기점화등 1개 이상
 3. 구명조끼 4개
 4. 구명부환 2개 이상
 5. 드로우 백 1개 이상
 - ③ 유선에 갖추어 두어야 하는 인명구조용 장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선박구명설비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장비는 관할관청이 해당 영업구역의 수심·수세 및 운항거리 등을 고려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 ④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명구조용 장비는 승객, 선원, 인명구조요원, 그 밖의 종사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2. 6. 29.]

제18조(도선의 인명구조용 장비 등)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선사업자가 도선 및 도선장에 갖추어야 하는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 22.>

1.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인명구조용 장비를 갖추 것
2. 도선마다 지름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 1개 이상이나 드로우 백 1개 이상을 갖추 것

3. 승객을 주로 운송하는 도선에는 도선마다 선실·조타실 및 기관실별로 1개 이상의 소화기를 갖추고, 화물을 주로 운송하는 도선에는 취급하는 화물에 발생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설비를 갖추는 것
4. 노도가 있는 도선에는 도선마다 해당 노선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수의 예비 노도를 갖추는 것
5. 승객을 주로 운송하는 도선의 경우 도선 주위에 난간 등의 위험방지 설비를 할 것
6. 도선장에는 도선장 간의 연락설비를 갖추는 것
7. 제17조제1항제6호·제7호 및 제9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장비와 시설을 갖추는 것.
이 경우 “유선”은 “도선”으로, “유선장”은 “도선장”으로 본다.
- ② 도선에 갖추어 두어야 하는 인명구조용 장비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6. 29.]

제19조(기준 적용의 예외) 관할관청은 해당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수심·수세·운항거리 및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위험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6. 29.]

제20조(인명구조요원)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유·도선사업자가 배치하여야 하는 인명구조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3. 6. 7.>

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해군 또는 해양경찰로 복무한 자로서 수상인명구조에 경험이 있는 사람
3.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안전 및 해양사고방지교육을 이수한 사람
4. 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의 최소인원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유선사업

- 가. 승객 정원이 13명 미만인 유선: 30척까지는 1명으로 하되, 30척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척을 초과하는 20척마다 1명을 추가한 인원수
- 나. 승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유선: 승객 정원 50명까지는 1명, 51명 이상 100명까지는 2명으로 하되,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을 초과하는 100명마다 1명을 추가한 인원수

2. 도선사업

- 가. 승객 정원이 50명 이하인 도선: 1명
- 나. 승객 정원이 51명 이상인 도선: 승객 정원이 100명까지는 2명으로 하되,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을 초과하는 100명마다 1명을 추가한 인원수

③ 유·도선의 선원이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인명구조요원의 임무를 겸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최소인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6. 29.]

제21조(안전교육) ① 행정안전부장관·해양경찰청장 및 관할관청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유·도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안전교육의 교육시간은 매년 8시간 이내로 한다.

③ 안전교육의 교육과목, 그 밖에 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6. 1. 22.]

제22조(출항·입항 기록·관리대상)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운항거리가 2해리 이상이거나 운항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선박(내수면에 운항하는 유·도선으로서 관할관청이 정하는 유·도선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관할관청이 지정하는 선박

[전문개정 2016. 1. 22.]

제22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유·도선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출항·입항에 관한 사항의 기록·관리
2.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승객의 승선신고서 작성·제출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7. 6.]

제23조(안전점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기준에 맞는지 여부
2. 법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른 유·도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의무를 준수하는지 여부
3. 법 제13조 및 제19조에 따른 유·도선 승객의 준수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
4. 법 제18조에 따른 승선 또는 선적의 제한 등을 준수하는지 여부
5.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인명구조요원의 자격·배치 기준에 맞는지 여부
6. 법 제23조에 따른 선원의 정원 및 자격기준에 맞는지 여부
7. 그 밖에 유·도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 6. 29.]

제24조(필요한 조치 등) ① 관할관청이 법 제27조에 따라 유·도선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말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관할관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선박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전문개정 2012. 6. 29.]

제24조의2(유·도선안전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유·도선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지부 또는 사업소를 포함한다)의 소재지
4.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6. 1. 22.]

제24조의3(협회의 지도·감독)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협회의 업무 수행을 지도·감독한다. <개정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사업·재정 및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 1. 22.]

제25조(운항규칙)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유·도선의 운항규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5.>

1. 유·도선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유·도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2. 유·도선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유효한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거리에서 선박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운항해야 한다.
3. 유·도선은 시계(視界)를 제한받는 때나 교량, 유·도선장 등의 부근 및 하천 폭이 좁은 구역에서는 속도를 줄여 운항하여야 하며, 특히 추진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제10조에 따른 소형 유·도선의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그 운항구역에 접근하지 아니하거나 저속으로 운항하여야 한다.
4. 유·도선은 시계가 제한된 구역에서 앞쪽에 다른 선박이 있는 경우 왼쪽으로 진로를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5. 유·도선이 다른 선박과 마주칠 때에는 진로를 오른쪽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6. 유·도선이 다른 선박과 같은 방향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근접하거나 경쟁적으로 운항해서는 아니 된다.
7. 유·도선이 다른 선박을 앞지르기하려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당하는 선박을 완전히 앞지르기하거나 그 선박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8. 유·도선과 다른 선박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오른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9. 제10조에 따른 소형 유·도선이 내수면을 횡단할 때에는 다른 대형선박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10. 유·도선장 또는 선착장으로 들어오는 유·도선은 유·도선장 또는 선착장 밖으로 나가는 유·도선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11. 유·도선은 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시에 정해진 유·도선장 또는 선착장 외의 장소에 정박하거나 승객을 승선·하선시켜서는 아니 된다.
12. 야간운항을 하는 유·도선은 운항 및 승객의 승선·하선에 필요한 불빛을 표시하여야 한다.
13. 선박 길이가 12미터 이상이거나 관할관청이 지정한 유·도선은 기적(汽笛) 또는 호종(선박 위치 알림 종) 등 음향신호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음향신호를 해야 한다.
 - 가. 다른 선박과 서로 시계 내에 있는 경우 오른쪽으로 진로를 변경할 때에는 단음 1회, 왼쪽으로 진로를 변경할 때에는 단음 2회, 후진할 때에는 단음 3회
 - 나. 다른 선박을 오른쪽으로 앞지르기할 때에는 장음 2회 후 단음 1회, 왼쪽으로 앞지르기할 때에는 장음 2회 후 단음 2회
 - 다. 다른 선박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단음 5회 이상
14. 유·도선이 조난을 당하여 구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제해사기구가 정하는 신호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6. 29.]

제26조(운항약관의 신고) 법 제32조에 따라 운항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유·도선 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운항약관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2. 6. 29.]

제27조(보험 등에의 가입) ① 유·도선사업자는 법 제33조에 따라 승객, 선원, 그 밖의 종사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사업 개시 전까지(보험 또는 공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 전까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6.>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6. 7. 6.>

[전문개정 2012. 6. 29.]

제28조(요금 및 운임) ① 유선사업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유선의 승선료 또는 선박 대여료를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면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도선사업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선의 운임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면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운임산출계산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관할관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도선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36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6. 29.]

제29조(보조 또는 융자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유선 또는 도선을 새로 건조(建造)하려는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원 금액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5. 3. 25.>

1. 보조: 유선 또는 도선의 건조에 드는 자금의 100분의 40 이내의 금액
2. 융자(융자의 알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유선 또는 도선의 건조에 드는 자금의 100분의 80 이내의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해양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이유

3. 보조 또는 용자를 받으려는 금액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시행하려는 사업의 내용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보조금 또는 용자금의 사용계획서

④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또는 용자를 받은 자는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분기별로 행정안전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7. 6.]

제30조(권한의 위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부산광역시의 낙동강에서 운항하는 유·도선에 관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의 낙동강관리에 관한 업무 중 유·도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영업구역이 둘 이상의 시, 군, 구 또는 해양경찰서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유·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 22., 2016. 7. 6., 2017. 7. 26.>

1. 법 제9조에 따른 유·도선사업의 행정처분
2. 법 제9조의2에 따른 과징금 처분
3. 법 제26조에 따른 유·도선 및 유·도선장에 대한 검사 또는 안전점검
4. 법 제27조에 따른 유·도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명령
5. 법 제37조에 따른 유·도선사업자에 대한 청문
6.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전문개정 2012. 6. 29.]

제31조(검사·교육의 위탁)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은 유·도선의 안전검사 및 교육업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유·도선사업자 등의 안전교육만 해당한다)
2. 관할관청이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12. 6. 29.]

제3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할관청(제30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권한 등을 위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7호의 사무로 한정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4. 23.>

1. 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유·도선사업의 면허·신고 및 면허·신고 갱신에 관한 사무
2. 법 제3조의2 및 제3조의3에 따른 유·도선사업의 양도·양수, 합병 및 상속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에 따른 휴업·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에 관한 사무
6. 법 제26조에 따른 검사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29조에 따른 사고발생의 보고에 관한 사무
8. 법 제36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9. 삭제 <2024. 4. 23.>

[전문개정 2012. 6. 29.]

제31조의3(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면허·신고사업의 구분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5조에 따른 선박기준 및 시설·장비·인력 기준: 2017년 1월 1일
3.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기준: 2026년 1월 1일
4. 제10조에 따른 구명조끼 의무착용 대상인 소형 유·도선의 지정기준: 2017년 1월 1일
5. 제21조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2017년 1월 1일
6. 제22조에 따른 출항·입항 기록·관리 및 승선신고서 작성 대상: 2017년 1월 1일

[전문개정 2026. 3. 24.]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 1. 22., 2016. 2. 3.>

[전문개정 2008. 12. 31.]

부칙 <제14072호, 1993. 12. 31.>

-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운항약관의 인가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조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이라 함은 이 영 시행일부터 1월을 말한다.
- ③(선령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신고를 한 유·도선사업자가 운항하는 강선인 유·도선의 선령기준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④(인명구조용장비 및 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신고를 한 유·도선사업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인명구조용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15135호, 1996. 8. 8.>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2& 생략

2*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 제5조제1항제2호나목, 제12조제2항·제3항, 제13조제3호, 제21조, 제26조, 제28조 및 제32조제4항중 “내무부령”을 각각 “내무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7조 제3항중 “해운항만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내지 <116>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5332호, 1997. 4. 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선체구조를 변경하거나 기관을 교체한 유·도선부터 적용한다.

③(유선사업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변경에 따른 조치) 이 영 시행전에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유선사업자로서 이 영 시행당시 그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 중에 있는 자는 내무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15379호, 1997. 5. 24.>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중 “관할지방해운항만청장”을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②내지3#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15592호, 1997. 12. 31.>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호중 “ 한국해기연수원 ” 을 “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으로 한다.

부칙 <제15892호,1998. 9. 17.> (선원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제3호중 “ 선원법에 의한 선원교육기관 ” 을 “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제16214호,1999. 3.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면허·신고의 유효기간연장에 따른 적용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도선사업의 면허 및 신고의 유효기간은 이 영 시행후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유·도선사업자 또는 면허나 신고를 갱신하는 유·도선사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541호,1999. 8. 23.>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중 “ 해난방지교육 ” 을 “ 해양사고방지교육 ” 으로 한다.

⑧내지 <13>생략

부칙 <제18312호,2004. 3. 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증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90호,2004. 5. 24.> (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 행정자치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 을 “ 해양수산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 ” 으로 한다.

⑭내지1*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9058호,2005. 9.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00호,2007. 9. 28.>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1호 중 “ 「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의 규정 ” 을 “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 ” 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1호 중 “ 「선박안전법」 제5조 ” 를 “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 로 한다.

⑫ 부터 ⑮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1216호,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개정규정 중 교육시간의 변경부분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유·도선사업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명구조용 장비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22624호,2011. 1.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명구조요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대한적십자사가 실시하는 수상인명구조활동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인명구조요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되, 이 영 시행 후 3개월까지 해당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부칙 <제23488호, 2012. 1.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897호, 2012. 6. 29.>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17호, 2013. 3. 23.>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조의2, 제5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 제11조의2,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3호, 제17조제1항제11호, 제21조, 제26조 및 제28조제1항·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⑮부터 2# 까지 생략

부칙 <제25753호, 2014. 11. 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 까지 생략

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조의2, 제5조제1항제2호 나목 단서, 제11조의2,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3호, 제17조제1항제11호, 제21조, 제26조 및 제28조제1항·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2조제6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공동으로”를 “국민안전처장관이”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해양경찰에”를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1(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25840호, 2014. 12. 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985호, 2015. 1. 6.>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2(및3)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6931호, 2016. 1. 22.>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45호, 2016. 2. 3.>

이 영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19호, 2016. 7.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 등의 가입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3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유·도선사업자로서 그 공제 또는 보험의 가입금액이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입금액 기준에 미달하게 가입한 유·도선사업자는 2017년 1월 7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가입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7751호, 2016. 12. 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적용례) 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유·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의 선체구조를 변경하거나 기관을 교체한 후 이 영 시행 당시 그 변경 또는 교체일부터 1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이 영 시행 당시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1>까지 생략

<34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 제11조의2,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3호, 제21조제3항, 제26조 및 제28조제1항·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6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이”를 “행정안전부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공동으로”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를 “해양경찰로”로 한다.

제21조제1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해양경비안전서의”를 “해양경찰서의”로 한다.

제31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1) 및 2)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43>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9188호, 2018. 9. 28.>

이 영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26호, 2019. 12.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09호, 2020. 3. 3.>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80호, 2021. 1. 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3321호, 2023. 3. 7.>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
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18호, 2023. 6. 7.>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3항 ” 을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 로 한다.

⑤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34194호, 2024. 2. 6.> (기상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8조제5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특보 ” 란 「기상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해양기상특보(주의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 <제34449호, 2024. 4. 23.>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4550호, 2024. 6. 4.>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 까지 생략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2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3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4호의 구분란 및 같은 표 제5호의 구분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2\$ 부터4\$ 까지 생략

부칙 <제35396호,2025. 3. 25.>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20호,2026. 3. 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7. 26.>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기준(제6조 관련)

1. 선령의 일반 기준

가.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유선 또는 도선(각각 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20년 이하

나.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유선 또는 도선: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선령

- 1) 목선(木船) 및 합성수지선: 15년 이하
- 2) 강선(鋼船): 20년 이하

2. 선령의 연장 기준

가. 제1호가목에 따른 선령기준의 적용을 받는 유선 또는 도선이 그 선령기준을 초과한 경우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그 선령을 연장할 수 있다.

- 1) 선령이 20년 초과 25년 이하인 유선 또는 도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이하 "선박검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관할관청이 검사를 의뢰하는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을 것
- 2)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유선 또는 도선(목선인 유선 또는 도선 및 합성수지선인 유선 또는 도선은 제외한다):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관리평가기준에 따른 선박 평가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을 것

나. 제1호나목에 따른 선령기준의 적용을 받는 유선 또는 도선(목선인 유선 또는 도선은 제외한다)이 그 선령기준을 초과한 경우로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그 선령을 연장할 수 있다.

3. 선령의 계산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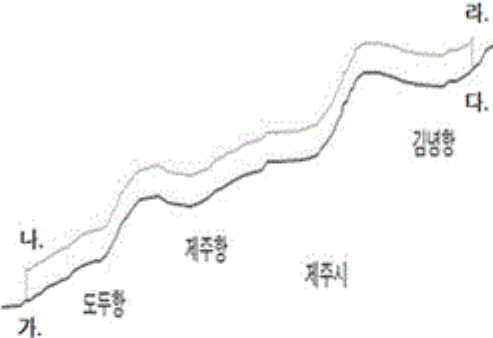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령은 해당 선박을 진수(進水)한 날부터 계산한다. 다만, 진수한 날을 알 수 없으면 진수한 달의 1일부터, 진수한 달을 알 수 없으면 진수한 해의 1월 1일부터 계산한다.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6. 4.>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할 수 있는 해수면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

| 구분 | 범위 | 기준점 |
|---------------------------------|---|--|
| 1. 강원특별
자치도 거
진구역 |  | 가. 북위 38°29'05", 동경 128°26'20"
나. 북위 38°29'05", 동경 128°27'36"
다. 북위 38°20'16", 동경 128°31'18"
라. 북위 38°20'16", 동경 128°32'34" |
| 2. 강원특별
자치도 속
초·대포구
역 |  | 가. 북위 38°18'42", 동경 128°32'28"
나. 북위 38°18'42", 동경 128°33'44"
다. 북위 38°03'54", 동경 128°40'41"
라. 북위 38°03'54", 동경 128°41'57" |
| 3. 강원특별
자치도 주
문진·강릉
구역 |  | 가. 북위 37°59'02", 동경 128°45'15"
나. 북위 37°59'02", 동경 128°46'31"
다. 북위 37°42'18", 동경 129°01'00"
라. 북위 37°42'18", 동경 129°02'16" |

| | | |
|--------------------------------|--|--|
| 4. 강원특별
자치도 묵
호·삼척구
역 | | 가. 북위 37°39'10", 동경 129°03'10"
나. 북위 37°39'10", 동경 129°04'26"
다. 북위 37°20'10", 동경 129°15'59"
라. 북위 37°20'10", 동경 129°17'15" |
| 5. 강원특별
자치도 임
원구역 | | 가. 북위 37°19'40", 동경 129°16'12"
나. 북위 37°19'40", 동경 129°17'28"
다. 북위 37°06'39", 동경 129°22'29"
라. 북위 37°06'39", 동경 129°23'45" |
| 6. 경상북도
울릉도구역 | | 가. 북위 37°32'02", 동경 130°50'26"
나. 북위 37°33'02", 동경 130°50'26"
다. 북위 37°31'55", 동경 130°56'17"
라. 북위 37°32'55", 동경 130°56'17"
마. 북위 37°31'30", 동경 130°56'17"
바. 북위 37°30'30", 동경 130°56'17"
사. 북위 37°28'43", 동경 130°48'30"
아. 북위 37°27'43", 동경 130°48'30" |

| | | |
|---|---|---|
| <p>7. 제주특별
자치도 제
주구역</p> |  | <p>가. 북위 33°29'24", 동경 126°24'41"
 나. 북위 33°30'24", 동경 126°24'41"
 다. 북위 33°33'45", 동경 126°45'42"
 라. 북위 33°34'45", 동경 126°45'42"</p> |
| <p>8. 제주특별
자치도 한
림구역</p> |  | <p>가. 북위 33°17'55", 동경 126°10'02"
 나. 북위 33°17'55", 동경 126°08'50"
 다. 북위 33°28'41", 동경 126°21'17"
 라. 북위 33°29'41", 동경 126°21'17"</p> |
| <p>9. 제주특별
자치도 서
귀포·화순
구역</p> |  | <p>가. 북위 33°14'05", 동경 126°14'10"
 나. 북위 33°13'31", 동경 126°13'11"
 다. 북위 33°16'15", 동경 126°41'54"
 라. 북위 33°15'15", 동경 126°41'54"</p> |

| | | |
|--------------------------|--|--|
| 10. 제주특별
자치도 성
산구역 | | 가. 북위 33°32'27", 동경 126°50'08"
나. 북위 33°33'27", 동경 126°50'08"
다. 북위 33°30'44", 동경 126°56'38"
라. 북위 33°30'44", 동경 126°55'26"
마. 북위 33°29'25", 동경 126°58'00"
바. 북위 33°28'25", 동경 126°58'00"
사. 북위 33°21'57", 동경 126°52'08"
아. 북위 33°21'14", 동경 126°52'58" |
|--------------------------|--|--|

비고

-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구역에서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할 수 있는 해수면의 범위는 해당 호 가목의 지점과 다목의 지점을 연결하는 해안선부터 외해(外海) 방향으로 1해리까지(해당 호 나목의 점과 라목의 점을 해안선의 모양을 따라 연결한 선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 제6호 및 제10호의 구역에서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할 수 있는 해수면의 범위는 가목 및 나목의 범위로 한다.
 - 해당 호 가목의 지점과 사목의 지점을 연결하는 해안선부터 외해 방향으로 1해리까지(해당 호 나목의 점과 아목의 점을 해안선의 모양을 따라 연결한 선까지를 말한다)
 - 해당 호 다목의 지점과 마목의 지점을 연결하는 해안선부터 본섬(각각 울릉도 및 제주도를 말한다) 방향으로 1해리까지(해당 호 라목의 점과 바목의 점을 해안선의 모양을 따라 연결한 선까지를 말한다)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8. 9. 2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를 바로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이상 위반 |
| 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제1항 제1호 | 30 | 70 | 150 |
| 나.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비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제1항 제3호 | 100 | 200 | 300 |

| | | | | |
|---|---------------|-----|-----|-----|
| 다. 법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제1항 제1호 | 100 | 200 | 300 |
| 라. 법 제12조제5항제10호를 위반하여 유선 및 유선장에서 수상에 유류·분뇨·폐기물을 버린 경우 | 법 제43조제1항 제1호 | 100 | 200 | 300 |
| 마. 법 제13조제2항(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당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43조제1항 제2호 | 30 | 70 | 150 |
| 바.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객의 출선(出船) 요구를 거부하거나 출선을 지연시킨 경우 | 법 제43조제1항 제1호 | 20 | 50 | 100 |
| 사.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비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제1항 제3호 | 100 | 200 | 300 |
| 아. 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제1항 제1호 | 100 | 200 | 300 |
| 자. 법 제18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도선 및 도선장에서 수상에 유류·분뇨·폐기물을 버린 경우 | 법 제43조제1항 제1호 | 100 | 200 | 300 |
| 차.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원의 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제1항 제1호 | 50 | 100 | 200 |
| 카.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비상상황 대비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제1항 제1호 | 50 | 100 | 200 |
| 타.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의 출항·입항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제1항 제1호 | 300 | | |
| 파.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객에게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제1항 제1호 | 200 | 300 | |
| 하.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객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여 승선신고서 기재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제1항 제1호 | 200 | 300 | |

| | | | | |
|--|---------------|-----|-----|-----|
| 거.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않은 승객에 대하여 승선을 거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제1항 제1호 | 200 | 300 | |
| 너. 법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승선신고서를 3개월 동안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제1항 제1호 | 100 | 200 | 300 |
| 더.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제1항 제1호 | 100 | 200 | 300 |
| 러.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항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제1항 제1호 | 100 | 200 | 300 |
| 머.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선료 또는 선박 대여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제1항 제1호 | 100 | 200 | 300 |
| 버.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임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제1항 제1호 | 100 | 200 | 300 |
| 서.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승선료, 선박 대여료 등을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제1항 제1호 | 10 | 25 | 50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30.] [행정안전부령 제633호, 2026. 7. 29.,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044 - 205 - 426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29.]

제2조 삭제 <2012. 6. 29.>

제3조(사업의 신청 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이하 “유·도선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면허신청서·사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관청(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7. 29.>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선박원부(船舶原簿)를 통하여 선박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3. 인명구조용 장비 및 유선장 또는 도선장(이하 “유·도선장”이라 한다) 시설명세서 각 1부
4. 선원 및 인명구조요원의 명단(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각 1부
5. 영업구역 도면 1부
6. 하천점용 등 허가서 또는 공유수면점용 등 허가서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6. 7. 29.>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선박검사증서(「선박안전법」을 적용받는 선박만 해당한다)
3. 선박원부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은 그 신청사항 또는 신고사항이 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면허증(이하 “사업면허증”이라 한다)이나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신고확인증(이하 “사업신고확인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면허증이나 사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가 면허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 면허(신고)사항 변경신청서(신고서)에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과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변경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관청은 그 신청사항 또는 신고사항이 법, 영 및 이 규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을 고쳐 쓰거나 재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3항과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면허증·사업신고확인증 재발급신청서에 해당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을 첨부(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6. 29.]

제3조의2(유·도선사업의 면허조건) 관할관청은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할 때에 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1. 해당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유선 및 도선(이하 “유·도선”이라 한다)의 안전 제고를 위하여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주차장, 승객 대기시설 및 화장실 등 승객 편의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6. 2. 12.]

제4조(사업의 승계 신고) ① 법 제3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선사업자 또는 도선사업자(이하 “유·도선사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승계한 날부터 7일(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

1. 상속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나.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다. 신고인과 같은 순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2. 양도·양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 나. 양도·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법인 합병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합병계약서 사본 1부
- 나. 법인의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1부

다.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법인 정관 사본(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만 해당한다) 1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사유에 의한 사업 승계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유·도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양수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③ 삭제 <2016. 2. 12.>

[전문개정 2012. 6. 29.]

[제목개정 2016. 2. 12.]

제5조(면허 또는 신고의 갱신) ① 관할관청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해당 유·도선사업자에게 유·도선사업의 갱신에 관한 사항을 전화, 팩스,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2. 12.>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갱신받거나 신고를 갱신하려는 자는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 종료일 5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사업 면허·신고 갱신신청·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사항 또는 신고사항이 법, 영 및 이 규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사업면허증이나 사업신고확인증을 재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6. 29.]

제6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 휴업·폐업 신고서에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휴업일 또는 폐업일 3일 전까지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 휴업·폐업 신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9., 2026. 7. 29.>

②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유·도선의 운항을 중단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 운항중단신고서를 운항중단 시작일 3일 전까지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항중단 당일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2016. 7. 1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업·폐업 또는 운항중단신고를 한 자는 지체 없이 그 휴업기간, 폐업일 또는 운항중단 기간을 유·도선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휴업 또는 운항중단신고를 한 자가 휴업 또는 운항중단 기간 중에 영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 재개신고서를 영업재개일 3일 전까지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9.>

[전문개정 2012. 6. 29.]

제7조(기상특보 발효 시의 운항기준 및 절차) 법 제8조제5항에서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란 별표 1에 따른 기상특보 발효 시 유·도선의 운항 허용 기준 및 절차를 말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6. 7. 19.]

제8조(사업면허취소 등의 통보 및 게시) ① 관할관청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통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의 행정처분 기록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행정처분 게시문을 해당 처분을 받은 유·도선장에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6. 29.]

제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7. 19.>

[전문개정 2012. 6. 29.]

제10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 7. 19.>

② 관할관청은 도선사업 운항구역의 여건,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및 사업체의 규모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 7. 19.>

[전문개정 2012. 6. 29.]

제1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관할관청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한 별지 제14호서식의 과징금납부통지서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그 통지서에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수납기관이 과징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3. 12. 12.>

⑥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과징금 처분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6. 29.]

제12조 삭제 <2012. 6. 29.>

제13조(승선 정원 등 기준) ① 법 제11조에 따른 유선의 승선 정원과 법 제14조에 따른 도선의 승선 정원은 승객 및 선원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 장소의 제곱미터 단위의 면적을 0.35제곱미터로 나눈 값으로 한다.

② 도선에 사람과 화물을 함께 싣는 경우에는 화물 55킬로그램을 승선 인원 1명으로 계산한다.

③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운항과 승객수송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까지 승선 정원을 줄일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른 승선 정원이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도선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른 승선 정원보다 적은 인원의 승선 정원을 신청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 6. 29.]

제13조의2(승객 안전 매뉴얼 비치 대상 유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선의 선실이나 통로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승객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총 톤수가 5톤 이상인 유선

2. 총 톤수가 5톤 미만의 선박 중 승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유선

3.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해당 영업구역의 수심(水深)、수세(水勢)、운항거리 등을 고려하여 승객 안전 매뉴얼의 비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선

[본조신설 2018. 10. 1.]

제14조(위험물의 범위) 영 제11조의2에서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험물 및 산적액체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2. 6. 29.]

제15조(도선의 적재 중량 등 산정기준) ① 법 제14조에 따른 도선의 적재 중량 및 용량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재 중량: 선박의 길이、너비、깊이를 미터 단위로 측정하고 이를 서로 곱하여 얻은 수의 10분의 7에 0.39를 곱하여 얻은 값으로 하되, 그 단위는 톤으로 한다.

2. 적재 용량: 선박의 길이、너비、깊이를 미터 단위로 측정하고 이를 서로 곱하여 얻은 수의 10분의 7에 0.5를 곱하여 얻은 값으로 하되, 그 단위는 세제곱미터로 한다.

② 관할관청은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적재 중량 및 용량이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까지 적재 중량 및 용량을 줄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6. 29.]

제15조의2(승객 안전 매뉴얼 비치 대상 도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선의 선실이나 통로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승객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총 톤수가 5톤 이상인 도선
2. 총 톤수가 5톤 미만의 선박 중 승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도선
3.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해당 영업구역의 수심(水深)、수세(水勢)、운항거리 등을 고려하여 승객 안전 매뉴얼의 비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선

[본조신설 2018. 10. 1.]

제16조(안전검사신청서 등) ①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안전검사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안전검사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증은 그 기재사항이 바람과 비 등에 헐거나 닳아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6. 29.]

제16조의2 삭제 <2016. 2. 12.>

제17조(선원 정원 등의 기준)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도선의 선원은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승선 정원이 20명 이상인 유·도선은 2명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선박직원법」에 따른 항해사, 운항사 또는 소형선박조종사의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
2. 승선 경력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관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
3.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중 일반조종면허를 받은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은 노로 젓는 보트 등 승객이 조종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 6. 29.]

제18조(선원 등의 명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선원 및 인명구조요원의 명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6. 29.]

제19조(안전교육과목 등) ①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유·도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교육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2. 12.>

1. 운항규칙 등 수상교통의 안전에 관한 과목
2. 생존기술, 응급조치, 인명구조용 장비 사용법 등 수난구호에 관한 과목
3. 그 밖에 유·도선사업 및 유·도선의 안전운항에 관하여 필요한 과목

② 행정안전부장관, 해양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유, 도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2. 6. 29.]

제19조의2(선원 등의 비상상황 대비훈련)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상상황 대비훈련(이하 “비상상황 대비훈련”이라 한다)의 종류 및 실시 주기는 별표 4와 같다.

② 유, 도선사업자는 비상상황 대비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훈련내용을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비상상황 대비훈련 기록대장에 기록하고, 훈련 실시 상황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③ 유, 도선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기록한 비상상황 대비훈련 기록대장과 촬영한 동영상(또는 사진)을 훈련 실시일부터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7. 19.]

제20조(출항·입항의 기록·관리 등) ① 유, 도선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출항, 입항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9호서식의 선박 출항, 입항 기록,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박 출항, 입항 기록, 관리대장은 유, 도선의 운항 중에는 해당 유, 도선의 조타실(操舵室)에 비치하고, 해당 운항이 종료된 후에는 운항 일자별로 그 운항일부터 3개월 동안 영업소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유, 도선사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승객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개인 단위 승객의 경우: 별지 제19호의2서식

2. 단체 또는 가족 단위 승객의 경우: 별지 제19호의3서식

④ 유, 도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승선신고서를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영업소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⑤ 유, 도선사업자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승선하려는 승객의 신분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8. 10. 1., 2024. 12. 20., 2025. 10. 10.>

1.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등 신분증명서로 확인

2. 신분증이 없는 미취학 아동(유아를 포함한다), 초, 중, 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등의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에 따른 승선신고서에 성명을 적고 해당 비고란에 신분이 확인된 대표자 또는 보호자가 본인의 이름을 적은 후 동승 여부를 확인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신분확인 방법을 이용하여 확인

[전문개정 2016. 2. 12.]

제21조(운항약관) ①영 제26조에 따른 운항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2. 12.>

② 법 제32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16. 2. 12., 2017. 7. 26.>

1. 운항약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2. 요금·운임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3. 부가운임에 관한 사항(도선의 경우만 해당한다)
4. 화물의 인도·인수·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도선의 경우만 해당한다)
5. 운송책임 및 배상에 관한 사항
6. 사업자의 면책에 관한 사항
7. 피해보상을 위하여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에 관한 사항
8. 승객 및 차량 승선권의 예매·발권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 6. 29.]

[제목개정 2016. 2. 12.]

제22조(승선료 등의 신고) 영 제 28조에 따른 유선의 승선료, 선박 대여료 및 도선의 운임에 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6. 29.]

제22조의2(요금 등의 게시) ① 법 제35조에 따른 승선료 등의 게시장소 및 게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도선의 경우
 - 가. 게시장소: 출입구 또는 객실 내
 - 나. 게시사항: 법 제3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2. 유·도선장의 경우
 - 가. 게시장소: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
 - 나. 게시사항: 법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도선 및 유·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관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7. 19.]

제23조(과태료 부과 및 수납대장의 작성) 관할관청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수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및 수납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

[전문개정 2012. 6. 29.]

부칙 <제298호, 2005. 9.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호, 2006. 9. 7.>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호, 2009. 4.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09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99호, 2011. 3.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7호, 2012. 5. 3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04호, 2012. 6.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도선사업 면허사항 변경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 제4조제1항 및 제5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신청 또는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호, 2013. 3. 23.>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 ” 을 “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 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1105호, 2014. 11. 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 까지 생략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19조제2항 중 “ 해양경찰서장 ” 을 각각 “ 해양경비안전서장 ” 으로 한다.

제14조 중 “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 을 “ 총리령 ” 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 해양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다) ” 을 “ 국민안전처장관(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포함한다) ” 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중 “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 을 각각 “ 국민안전처장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해양경비안전서장 ” 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 를 각각 “ 국민안전처,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서 ” 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0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 를 각각 “ 국민안전처,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서, ” 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 해양경찰서장 ” 을 각각 “ 해양경비안전서장 ” 으로 한다.

2% 부터4! 까지 생략

부칙 <제1247호,2016. 1. 27.>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258호,2016. 2.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항·입항 기록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기록된 선박 출항·입항 기록·관리대장의 관리방법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1302호,2016. 7.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4조 및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포함한다)은”을 “행정안전부장관·해양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으로,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중 “국민안전처장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0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서 또는 시·도, 시·군·구”를 각각 “시·도, 시·군·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57>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77호, 2018. 10.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호, 2022. 3. 30.>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7호, 2023. 12.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1호, 2024. 12. 20.>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제1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580호, 2025. 10.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2호, 2025. 12. 26.>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
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3호, 2026. 7. 29.>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연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
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설 2016. 7. 19.>

기상특보 발효 시 유·도선의 운항 허용 기준 및 절차(제7조 관련)

1. 운항 허용 기준

가. 공통기준

- 1) 관할관청은 기상특보 발효 시 실제 기상상황을 종합 판단하여 유·도선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운항을 허용하여야 한다.
- 2) 관할관청은 기상상황으로 시정(視程)이 1 km 미만인 경우에는 운항을 허용할 수 없다.

나. 기상특보별 세부기준

- 1) 호우, 폭풍해일, 강풍, 풍랑 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유·도선 운항로의 실제 기상상황이 다음의 유·도선 규모별 풍속 기준 또는 파고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도선의 운항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 구 분 | 10톤 미만 | 10톤 이상~ 30톤 미만 | 30톤 이상~ 100톤 미만 | 100톤 이상 |
|-------|---------|----------------|-----------------|---------|
| 풍속 기준 | 10% 이상 | 10% 이상 | 12% 이상 | 14% 이상 |
| 파고 기준 | 1.5m 이상 | 2m 이상 | 2.5m 이상 | 2.5m 이상 |

- 2) 한파 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유·도선 운항로가 결빙된 경우 운항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쇄빙선 또는 예인선 등을 이용하여 결빙을 제거한 경우 운항로의 안전운항 상태를 확인한 후 강선(鋼船)에 한정하여 운항을 허용할 수 있다.
- 3) 대설, 황사, 건조, 폭염 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시정 등 실제 기상상황을 종합 판단하여 운항을 허용한다.

2. 운항 허용 절차: 다음 각 목의 절차에 따른다.

가. 기상상태 판단: 현장 확인

나. 운항 허용·통제 여부 통보: 구두, 유선 또는 공문

다. 운항 통제 이행 여부 확인: 현장 확인

라. 운항 통제 해제: 기상특보 확인

[별표 2] <개정 2016. 7. 19.>

행정처분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개월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한 후에 다시 그 목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사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할 때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기간까지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 라.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2. 개별기준

| 위 반 사 항 | 근 거 법
조 문 | 행 정 처 분 기 준 | | | | |
|--|----------------|-------------|----------|----------------|-------|-------|
| | | 구분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 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 유·도선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법 제9조제1항제1호 | | 사업장 폐쇄 | | | |
| 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기간의 만료,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2 | | 사업정지 1개월 | 면허취소 또는 사업장 폐쇄 | | |

| | | | | | | | |
|---|-----------------|--|--------------------------------|--------------------------------|--|-------------------------|--|
| 용수의 목적 외 사용
기간의 만료 및 「어
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기간이 만료
된 경우 | | | | | | | |
| 다. 유·도선사업자, 선
원(인명구조요원을 포
함한다), 그 밖의 중
사자의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이나 주의의
무 태만 등으로 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법 제9조제
1항제3호 | 사망사고
발생 시

그 밖의
안전사고
발생 시 |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2개월 | 면허취소
또는
사업장
폐쇄

사업정지
3개월 | 면허취소
또는
사업장
폐쇄 | |
| 라. 사고를 당한 피해자
에게 정당한 사유 없
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피해보상
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조제
1항제4호 |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2개월 | 사업정지
3개월 | 면허취소
또는
사업장
폐쇄 | |
| 마. 「선박안전법」,
「선박법」, 「선박직
원법」, 「수질 및 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관
리법」,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9조제
1항제5호 | | 경고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3개월 | 면허취소
또는
사업장
폐쇄 | |
| 바. 법 제3조제1항에 따
른 신고(유·도선사업
을 하려는 자가 관할
관청에 하는 신고에
한정한다)를 하지 않
거나 거짓이나 그 밖
의 부정한 방법으로 | 법 제9조제
1항제6호 | | 사업장
폐쇄 | | | | |

| | | | | | | |
|--|-----------------------|-------------|-------------|-------------------------|-------------------------|--|
| <p>신고를 한 경우</p> <p>사. 법 제3조제1항(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3조의3제3항, 법 7조제1항, 법 제32조제1항, 법 제34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p> <p>1)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p> <p>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p> | <p>법 제9조제1항제6호</p> | | | | | |
| | | 경고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3개월 | 면허취소
또는
사업장
폐쇄 | |
| |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3개월 | 면허취소
또는
사업장
폐쇄 | | |
| <p>아. 법 제27조 각 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p> | <p>법 제9조제1항제7호</p> | 경고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3개월 | 면허취소
또는
사업장
폐쇄 | |
| <p>자. 법 제12조제3항 또는 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선 또는 도선을 조종한 경우</p> | <p>법 제9조제1항제7호의 2</p> | 경고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3개월 | 면허취소
또는
사업장
폐쇄 | |
| <p>차.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선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 유·도선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 <p>법 제9조제1항제8호</p>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장
폐쇄 | | | |

[별표 3] <개정 2016. 7. 19.>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제1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징금 금액 | | | |
|--|-------------|----------------|-------|-------|-------|
| | | 구분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1. 도선사업자, 선원(인명구조요원을 포함한 다), 그 밖의 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법 제9조제1항제3호 | 사망사고 발생 시 | 600 | 1,000 | |
| | | 그 밖의 안전사고 발생 시 | 300 | 600 | 1,000 |
| 2.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피해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조제1항제4호 | | 600 | 1,000 | |
| 3. 「선박안전법」, 「선박법」, 「선박직원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9조제1항제5호 | | | 300 | 1,000 |
| 4. 법 제27조 각 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조제1항제7호 | | | 300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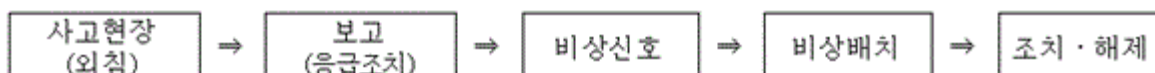
[별표 4] <신설 2016. 7. 19.>

비상상황 대비훈련의 종류 및 실시 주기(제19조의2 관련)

| 구분 | 훈련내용 | 실시 주기 |
|----------------------------|--|-------|
| 1. 선내숙지 훈련 | 가. 선내방송 및 비상신호
나. 비상탈출구 위치, 승객 유도
다. 인명구조장비 및 안전설비 위치 및 수량, 관리방법
라. 승객 안전사항
마. 비상연락망 | 매월 |
| 2. 퇴선 훈련 | 가. 개인별 역할 및 대응방법
나. 퇴선위치 및 승객 유도 | 매월 |
| 3. 기름유출대응, 소화 훈련 | 가. 사고 위치별 배치 위치
나. 개인별 역할 및 대응방법
다. 기름유출시 대응장비 사용법
라. 소화기 등 소화장비 사용법 | 매월 |
| 4. 인명구조, 추락 및 충돌·좌초사고대응 훈련 | 가. 사고 위치별 배치 위치
나. 개인별 역할 및 대응방법
다. 인명구조장비 사용법 및 장비활용 구조 | 6개월 |
| 5. 침수 및 추진기관 사고대응 훈련 | 가. 사고 위치별 배치 위치
나. 개인별 역할 및 대응방법
다. 침수시 대응 장비사용법 | 6개월 |

비고

1. 훈련은 유·도선사업자(또는 선장)가 지정하는 일시에 실시한다.
2. 승객이 승선하고 있는 상태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훈련 상황을 안내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3. 선내방송 시에는 “(훈련) ○○구역 ○○발생 ○○비상배치”를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비상상황 대비훈련 시에 비상신호 방법은 기적 또는 사이렌에 의한 연속 7회의 단음과 계속 1회의 장음으로 한다.
5. 비상상황 대비훈련 표준절차



() 사업 [] 면허신청서
 []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알뜰)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
신고인 | 상호(명칭) | | |
|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전화번호:) | | |
| 신청·신고
사항 |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위치 | | |
| | 영업구역 | | |
| | 선박명세 | | |
| | 사업기간 | | |
| | 영업시간(운항 횟수) | |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신청, ()신고합니다.

의
의
의

신청인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관할관청의 장

귀하

| | | |
|-----------------|---|-----------|
| 신청인·신고인
제출서류 | 1. 정관(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2.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선박원부로 선박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인명구조용 장비 및 유선장 또는 도선장 시설명세서 각 1부
4. 선원 및 인명구조요원의 명단(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각 1부
5. 영업구역 도면 1부
6. 하천점용 등 허가서 또는 공유수면점용 등 허가서 사본 1부 | 수수료
없음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선박검사증서(「선박안전법」를 적용받는 선박만 해당합니다)
3. 선박원부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의 책임이론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활이사한 중 제2호 및 제3호를 활이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선박검사증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고,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선박의 소유권이 나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 선박원부의 사본을 제출하거나 선박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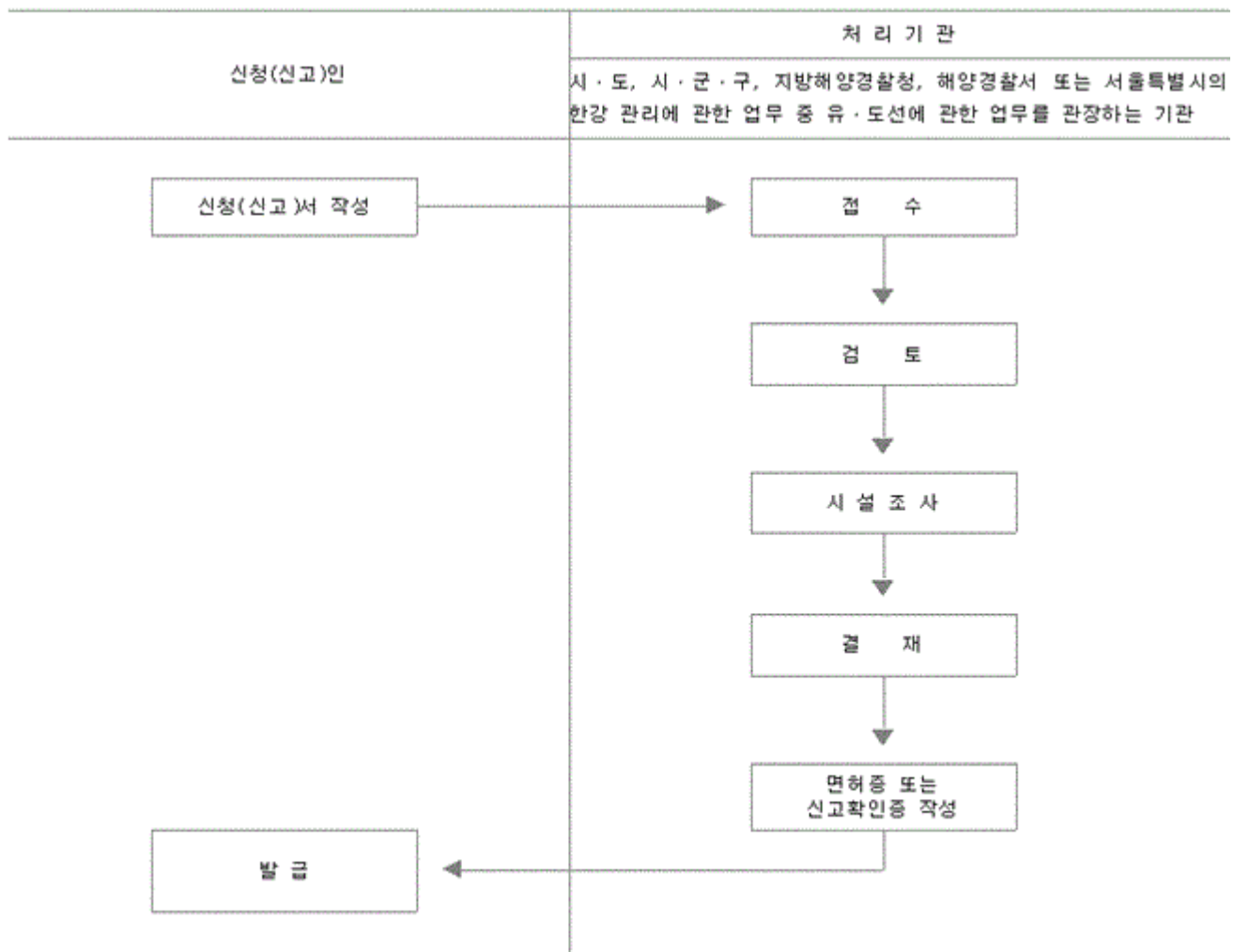
유의사항

영업구역에 중간 기착지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 기착지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처리절차

이 신청(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7. 26.>

| | | |
|--|----------------|---|
| 제 호 | | |
| ()사업면허증 | | |
| (앞쪽) | | |
| 신청인 | 상호(명칭) |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 소 | |
| 면허사항 |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위치 | |
| | 영업구역 | |
| | 선박명세 | |
| | 사업기간 | 영업시간(운항 횟수) |
| | 요금 또는 운임 | 선원 및 인명구조요원
선원 명
인명구조요원 명 |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div> | | |
|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 <div style="border: 2px solid orange; width: 100px; height: 10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직인 </div> |

210mm× 297mm[백상지(1종) 120g/m²]

(뒤쪽)

변경 및 처분 사항

면허번호 제 호

[illegible]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7. 26.>

| | | |
|---|----------------|---|
| 제 호 | | |
| ()사업신고확인증 | | |
| (앞쪽) | | |
| 신청인 | 상호(명칭) |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 소 | |
| 면허사항 |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위치 | |
| | 영업구역 | |
| | 선박명세 | |
| | 사업기간 | 영업시간(운항횟수) |
| | 요금 또는 운임 | 선원 및 인명구조요원
선원 명
인명구조요원 명 |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 <div style="border: 2px solid orange; width: 100px; height: 10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직인 </div> |

210mm× 297mm[백상지(1종) 120g/㎡]

(뒤쪽)

변경 및 처분 사항

신고번호 제 호

[illegible]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7. 26.>

()사업 [] 면 허 [] 신 고 사항 변경 신청서(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4표를 합니다.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신청인
·
신고인 | 상호(명칭) | |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 주 소 | | |
|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위치 | | | |
| 변경사항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 | | |
| | | | |
| | | | |
| 변경 사유 | | |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 | | | | |
|------------------|---|---------------------------------------|---|---------------------------------------|------------|---------------------------------------|---|---------------------------------------|---|----|
| 신청인(신고인) 제출서류 | 1. 사업면허증(면허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사업신고확인증(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 수수료
없 음 | | | | | |
| 처리절차 | | | | | | | | | | |
| 신청서(신고서)
) 작성 | → | 접 수 | → | 검 토 | → | 결 재 | → | 면허증 또는
신고확인증 작성 | → | 발급 |
| 신청인(신
고인) | | 시·도,
시·군·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 | 시·도,
시·군·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 | 시·도,
시·군·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 | 시·도,
시·군·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7. 26.>

()사업 [] 면허증
[] 신고확인증 재발급신청서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신청인 | 상호(명칭) | |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 주 소 | | |
|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위치 | | | |
| 재발급 사유 | | |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6항에 따라 사업면허증·사업신고확인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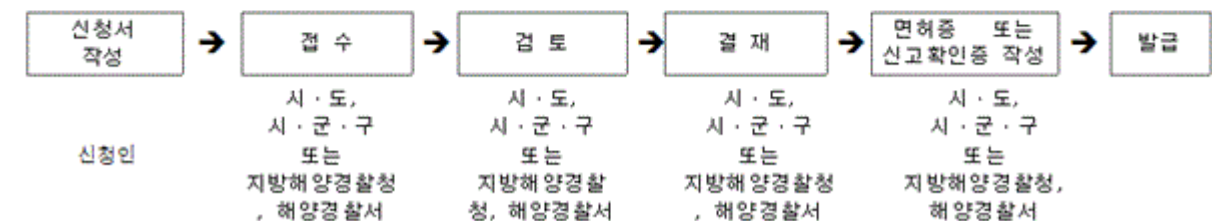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신청인
제출서류 | 붙여 못쓰게 된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m²]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6. 7. 29.>

()사업 승계신고서

(알록)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 |
| 피승계인 |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승계인 |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승계내용 | 사업의 종류 | |
| | 사업내용(영업구역 포함) | |
| 승계의 시기 | | |
| 승계의 사유 | |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관할관청의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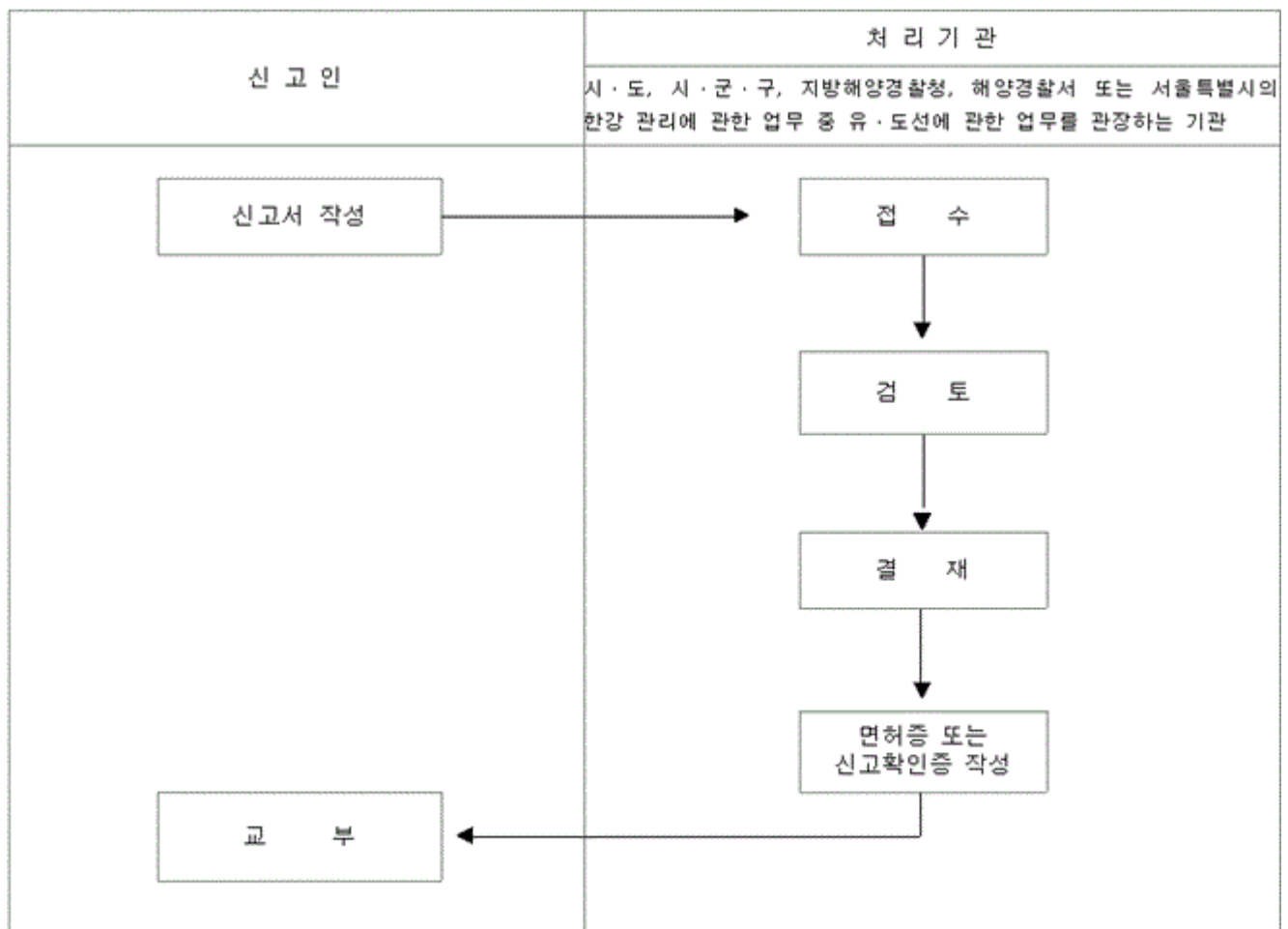
귀하

| | | | |
|----------------|-----------|--|-----------|
| 신고인
제출서류 | 상속의 경우 | 1.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고인과 동 순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 수수료
없음 |
| | 양도·양수의 경우 | 1.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2. 양도·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결정서 사본(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 |
| | 합병의 경우 | 1. 합병 계약서 사본 1부
2. 법인의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결정서 사본 1부
3. 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법인 정관 사본 1부 | |
| | 그 밖의 경우 | 1. 해당 사유별로 유·도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양도·양수의 경우 | 1.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 | 합병의 경우 |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210mm×297mm[백상지 80g/㎡]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16.2.12.](#)>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16.2.12.](#)>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 7. 26.>

()사업 [] 면허 갱신신청(신고)서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5일 |
| 신청인·신고인 | 상호(명칭) | |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 주소

(전화번호 :) | | |
|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위치 | | | |
| 영업 구역 | | | |
| 선박 명세 | | | |
| 사업 기간 | | | |
| 영업 시간
(운항 횟수) | | |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 합니다.

100 100 100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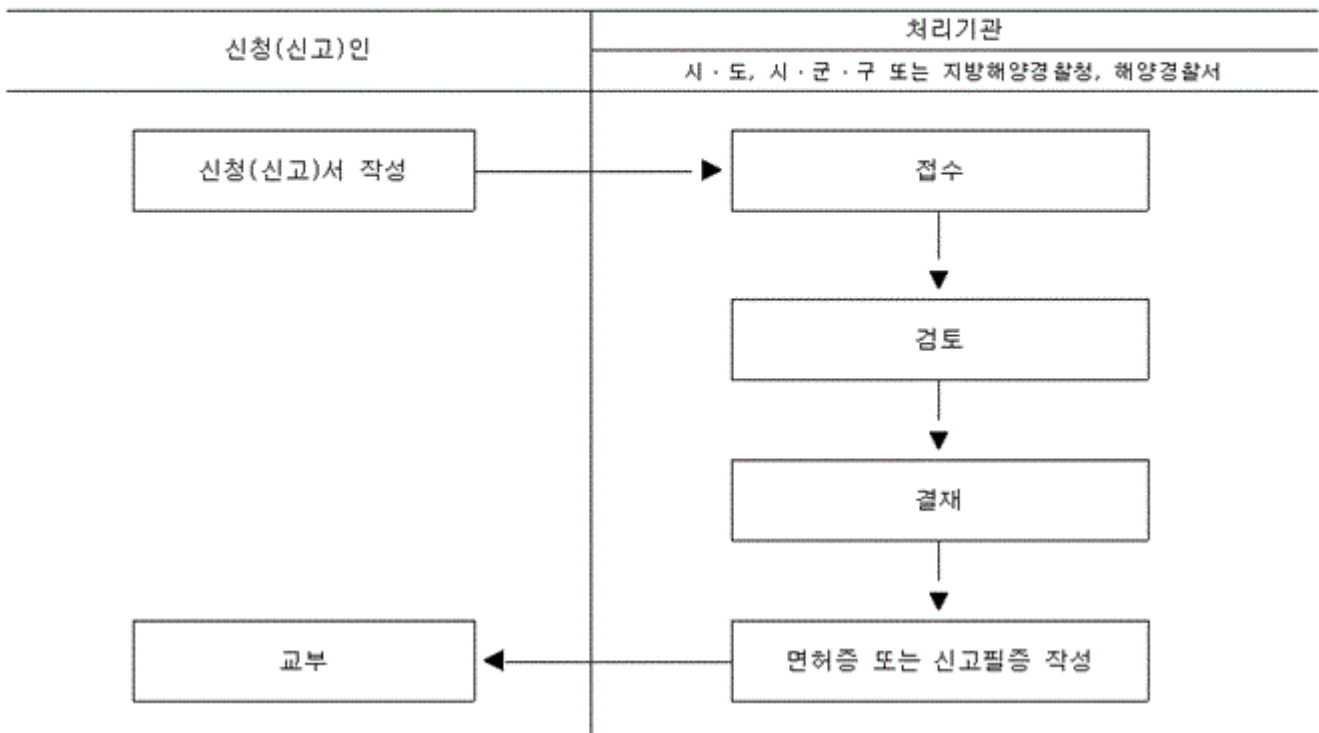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신청(신고)인
첨부서류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 중 변경된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이 신청(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6. 7. 29.>

()사업 ☐ 휴 업, ☐ 폐업
☐ 운항중단, ☐ 재개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
| 신고인 | 상호(명칭) | |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 주 소
(전화번호:) | | |
| 신고사항 |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위치 | | |
| | 영업구역 | | |
| | 선박명세 | | |
| | 휴업·폐업·운항중단·영업재개 예정일 | | |
| | 휴업·운항중단 기간 | | |
| | 사 유 | | |
|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 미제출 사유(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만 해당) | | |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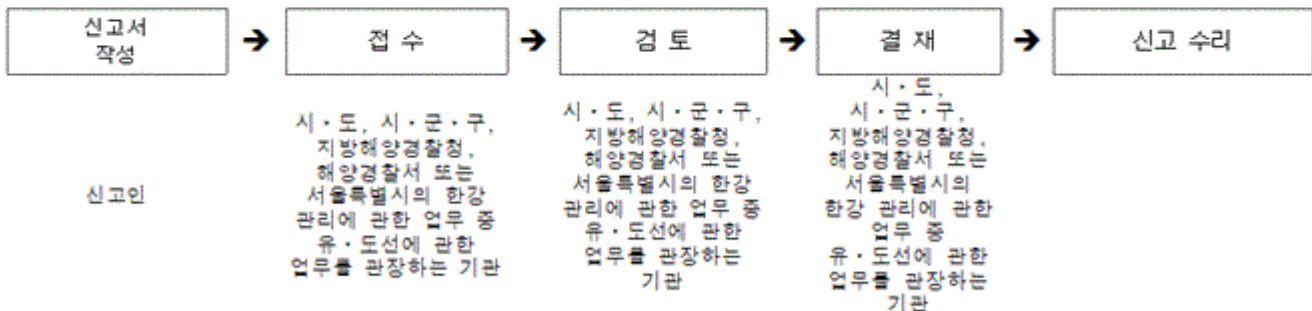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관할관청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유 의 사 항

폐업한 후에도 면허증 등을 제출하지 않고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3. 30.>

| | | | |
|--|--|--|--|
| 제 호 | | | |
| 행정처분 통지서 | | | |
| 상호(명칭) | | | |
|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위치 | | | |
| 사업자명(대표자) | | 생년월일 | |
| 주 소 | | | |
| 행정처분 내용 | | | |
| <p>귀 사업장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 조제 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처분을 합니다.</p> <p>※ 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 | | |
| 시장·군수·구청장
해양경찰서장 | | <div style="border: 2px solid orange; padding: 10px; display: inline-block;"> 직인 </div> | |

210mm×297mm[백상지 80g/m²]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2.6.29>

행정처분 기록대장

| 일련
번호 | 문서번호 및
발송일 | 상호(명칭) |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위치 | 사업자명
(대표자) | 위반사항 | 처분내용 및
처분일자 | 행정처분
기간 | 근거 법조문 | 기록자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4mm × 257mm [백상지 80g/㎡]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7. 7. 26.>

행정처분 게시문

| | |
|---|-----------------------|
| 상호(명칭) | |
|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위치 | |
| 처분 내용 | |
| 처분 기간 | |
| 관계 법조문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 조 |
| <p>이 게시문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 조를 위반한 사업장에 부착
됩니다. ()의 허가 없이 이 게시문을 훼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margin-top: 5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p>시장·군수·구청장</p> <p>해양경찰서장</p> </div>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width: 60px; height: 6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p style="color: red;">직인</p> </div> </div> | |

257mm×364mm[백상지 150g/㎡]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5. 12. 26.>

과징금납부통지서(수납기관 보관용)

| | | |
|--|---------|-----|
| ① 발 행 번 호 | | |
| ② 납부자 | 성명(대표자) | |
| | 주소(회사명) | |
| ③ 위 반 일 | | |
| ④ 위 반 행 위 | | |
| ⑤ 납 부 금 액 | | |
| ⑥ 납 부 기 한 | | |
| ⑦ 수 납 기 관 | | |
| <p>「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이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p> | | |
| 년 | 월 | 일 |
| 시장·군수·구청장
해양경찰서장 | 직인 | 수납인 |

과징금납부확인통지서(행정기관 보관용)

| | | |
|----------------------------|---------|-----|
| ① 발 행 번 호 | | |
| ② 납부자 | 성명(대표자) | |
| | 주소(회사명) | |
| ③ 위 반 일 | | |
| ④ 위 반 행 위 | | |
| ⑤ 납 부 금 액 | | |
| ⑥ 납 부 기 한 | | |
| ⑦ 수 납 기 관 | | |
| <p>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통지합니다.</p> | | |
| 년 | 월 | 일 |
| 시장·군수·구청장
해양경찰서장 | 귀하 | 수납인 |

과징금납부영수증(납부자 보관용)

| | | |
|---------------------|---------|-----|
| ① 발 행 번 호 | | |
| ② 납부자 | 성명(대표자) | |
| | 주소(회사명) | |
| ③ 위 반 일 | | |
| ④ 위 반 행 위 | | |
| ⑤ 납 부 금 액 | | |
| ⑥ 납 부 기 한 | | |
| ⑦ 수 납 기 관 | | |
| <p>위와 같이 영수합니다.</p> | | |
| 년 | 월 | 일 |
| 수납기관 | | 수납인 |

297mm×210mm[백상지 80g/㎡]

[illegible]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7. 7. 26.>

안전검사신청서

(앞쪽)

|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5일 | |
| 신청인 | 상호(명칭) | | |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 | 주소
(전화번호 :) | | | |
|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위치 | | | | |
|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장소 및 일시 | | | | |
|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의 명세 | 선명 | 총 톤수 | 승선 정원
승객 명
선원 명 | 적재 중량(용량) |
| | 선질 | 구조 | 추진기관 | 제조 연월일 |
| 선박 제조자 | 상호 | | 성명 | |
| | 주소
(전화번호 :) | | |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선(도선, 비상구조선)의 안전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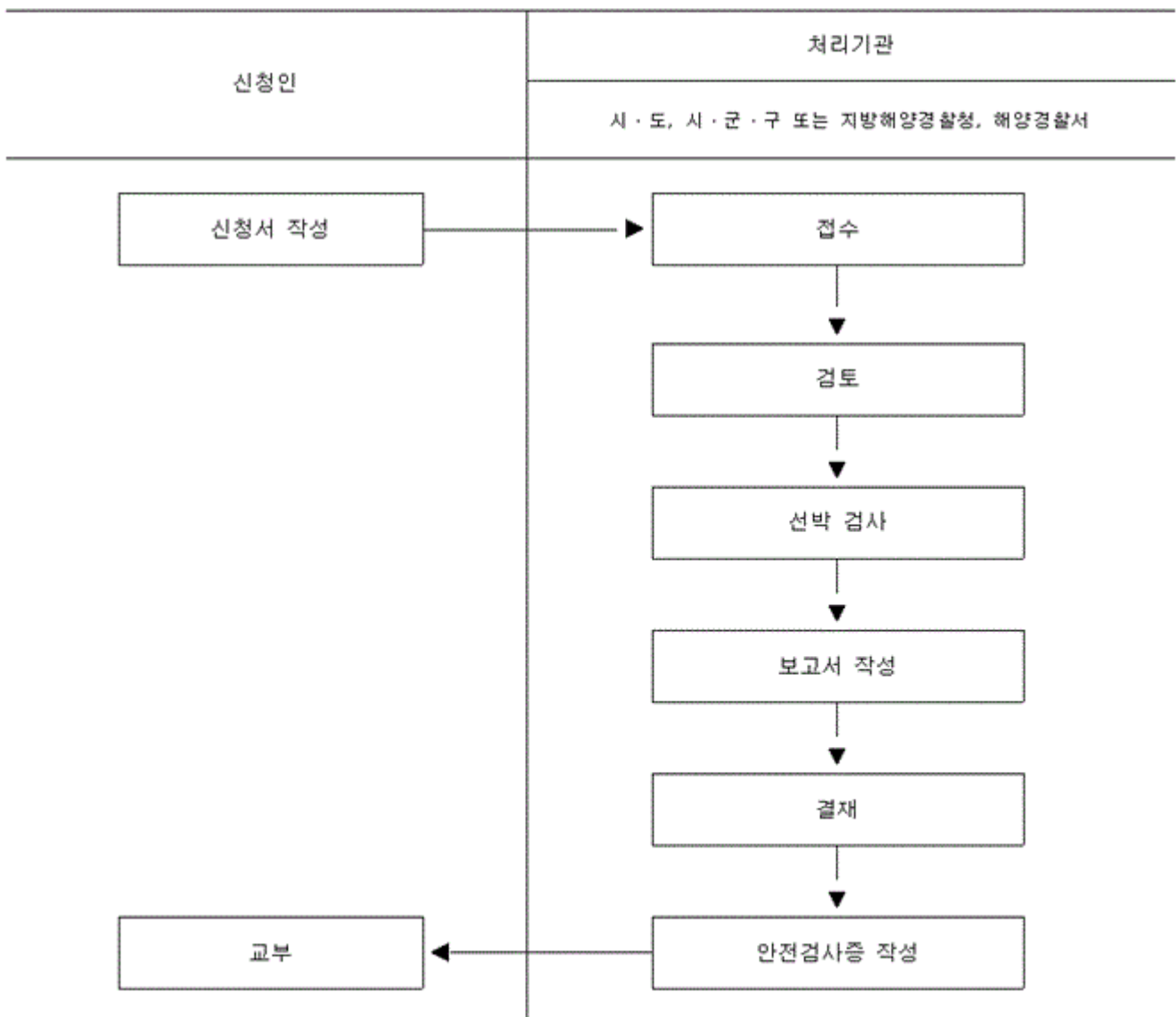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선박마다 구조도면 1부(구조가 동일한 선박이 2척 이상일 경우에는 그 대표되는 선박의 구조도면 1부로 갈음합니다)
2. 인명구조장비에 대한 명세서 1부 | 수수로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6항
참조 |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7. 7. 26.>

| | | | | | |
|---|---------------|-----|------|-------------------|-------------|
| 제 호 | | | | | |
| 안 전 검 사 증 | | | | | |
| 사업자 | 상호(명칭) | | | | |
|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 |
| | 주소 | | | | |
| 선박의 명세 | 선 명 | | 총톤수 | 승선 정원 | 적재 중량(용량) |
| | | | | 승객
선원 | 명
명 |
| | 선 질 | | 추진기관 | 구 조 | 제조 연월일 |
| | | | | 연장:
폭 :
깊이: | m
m
m |
| | 선박 제조자 | 상 호 | | 성명 | |
| 주 소 | | | | | |
| 영업구역 | | | | | |
| 영업시간 | | | | | |
|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p>「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검사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p> <div style="text-align: right; border: 2px solid red; padding: 10px; width: 100px; margin: 0 auto;">직인</div> | | | | | |

210mm × 297mm [백상지 150g/㎡]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2.6.29>

선원 및 인명구조요원 명부

| 구 분 | 성 명 | 주민등록
번호 | 주 소 | 고용일 | 변동일 | 해기사 및
인명구조요
원 자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 × 297mm [백상지 80g/㎡]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신설 2016. 7. 19.>

비상상황 대비훈련 기록대장

| | | | | |
|---------------|-----|-------|---------------|--|
| 1. 훈련 개요 | | | | |
| 일 시 | | | 장 소 | |
| 종 류 | | | | |
| 참 여 자
(명단) | 선 원 | | 그 밖의
종 사 자 | |
| 2. 훈련 전경 | | | | |
| (사 진) | | (사 진) | | |
| | | | | |
| (사 진) | | (사 진) | | |
| | | | | |
| 3. 그 밖의 참고사항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 19호서식] <개정 2012.6.29>

선박 출항·입항 기록·관리대장

| | | | | | | | | | | | |
|---------------------|-------|-------|-------|-------|-----|-------|----|-------|-----|-------|-----|
| 1. 선박 제원 및 승선 선원 현황 | | | | | | | | | | | |
| 선 명 | | | | 톤 수 | 톤 | | | 승선 정원 | 명 | | |
| 선원 정원 | 명 선장: | | | , 선원: | | | | | | | |
| 인명구조
요 원 | 명 | | | | | | | | | | |
| 2. 출항·입항 사항 | | | | | | | | | | | |
| 출항 | | | 중간 기착 | | | | | 입항 | | | 기록자 |
| 일시 | 출항지 | 승선 인원 | 시간 | | 기착지 | 승선 인원 | | 시간 | 입항지 | 승선 인원 | |
| | | | 도착 | 출항 | | 하선 | 추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신설 2016.2.12.>

승선신고서(개인단위승객) (BOARDING DECLARATION)

| | |
|-------------------|------------------|
| 선명(Ship's Name) : | 날짜(Date) : . . . |
|-------------------|------------------|

| | | |
|-------------------------|--------------------|-------------------|
| 성명
(Name) | | 전화번호
(Tel No.) |
| 생년월일
(Date of birth) | | |
| 성 별
(Sex) | 남 여
(M, F) | |

182mm×257mm[백상지 80g/m²]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3서식] <개정 2025. 10. 10.>

승선신고서(단체·가족단위승객) (BOARDING DECLARATION)

선 명(Ship's Name) : _____ 날짜(Date) : _____

| 단체명
(Group Name) | 대표자·보호자
성명
(Name) | 생년월일
(Date of birth) | 성별
(Sex) | 전 화 번 호
(Tel No.) | 비 고
(Remark) |
|---------------------|-------------------------|-------------------------|---------------|----------------------|-----------------|
| | | | 남 여
(M, F) | | |

| 순번
(No) | 성 명
(Name) | 생년월일
(Date of birth) | 성별
(Sex) | 전 화 번 호
(Tel No.) | 비 고
(Remark) |
|------------|---------------|-------------------------|---------------|----------------------|-----------------|
| | | | 남 여
(M, F) | | |
| | | | 남 여
(M, F) | | |
| | | | 남 여
(M, F) | | |
| | | | 남 여
(M, F) | | |
| | | | 남 여
(M, F) | | |
| | | | 남 여
(M, F) | | |
| | | | 남 여
(M, F) | | |
| | | | 남 여
(M, F) | | |
| | | | 남 여
(M, F) | | |
| | | | 남 여
(M, F) | | |
| | | | 남 여
(M, F) | | |
| | | | 남 여
(M, F) | | |
| | | | 남 여
(M, F) | | |
| | | | 남 여
(M, F) | | |
| | | | 남 여
(M, F) | | |

유의 사항

신분증이 없는 미취학 아동(유아 포함), 초·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등의 경우에는 성명을 적고 해당 비교란에 신분이 확인된 대표자 또는 보호자가 본인의 성명을 적은 후 동승 여부를 확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운항약관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신고인 | 상호(명칭) | |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 주 소
(전화번호:) | | |
| 신고사항 | 적용 범위 | | |
| | 시행일 | | |
| | 변경 사유 | |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운항약관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15. 16. 17.

신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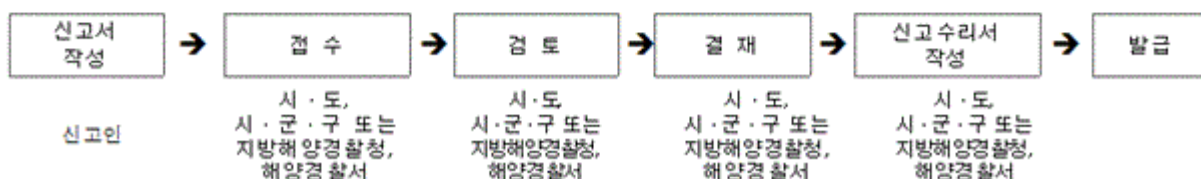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신 고 인
제 출서류 | 운항약관 1부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7. 7. 26.>

[] 유선 승선료 · 선박 대여료 신고 · 변경신고서
[] 도선 운임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유선: 즉시
도선: 3일 | |
|-------------|--------------|--------|------------------|-----------|
| 신고인 | 상호(명칭) | | | |
|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
| | 주 소 | | | |
| | (전화번호:) | | | |
| 신고(변경신고) 사항 | 유 · 도선장의 위치 | | | |
| | 영업구역 | | | |
| | 선박명세 | | | |
| | 운항구간 또는 대선시간 | 운항구간 ~ | 대선시간 시간 | |
| | 유선 승선료 | 대인 | | 원 |
| | | 소인 | | 원 |
| | 유선 대여료 | 척 | | 원 |
| | 도선 운임 | 대인 | 일반관광객 | 원, 지역주민 원 |
| | | 소인 | 일반관광객 | 원, 지역주민 원 |
| | | 화물 | 일반관광객 | 원, 지역주민 원 |
| 적용일 | | | | |
| 변경 사유 | | | |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유선 승선료, 선박 대여료 및 도선 운임을 신고 · 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시·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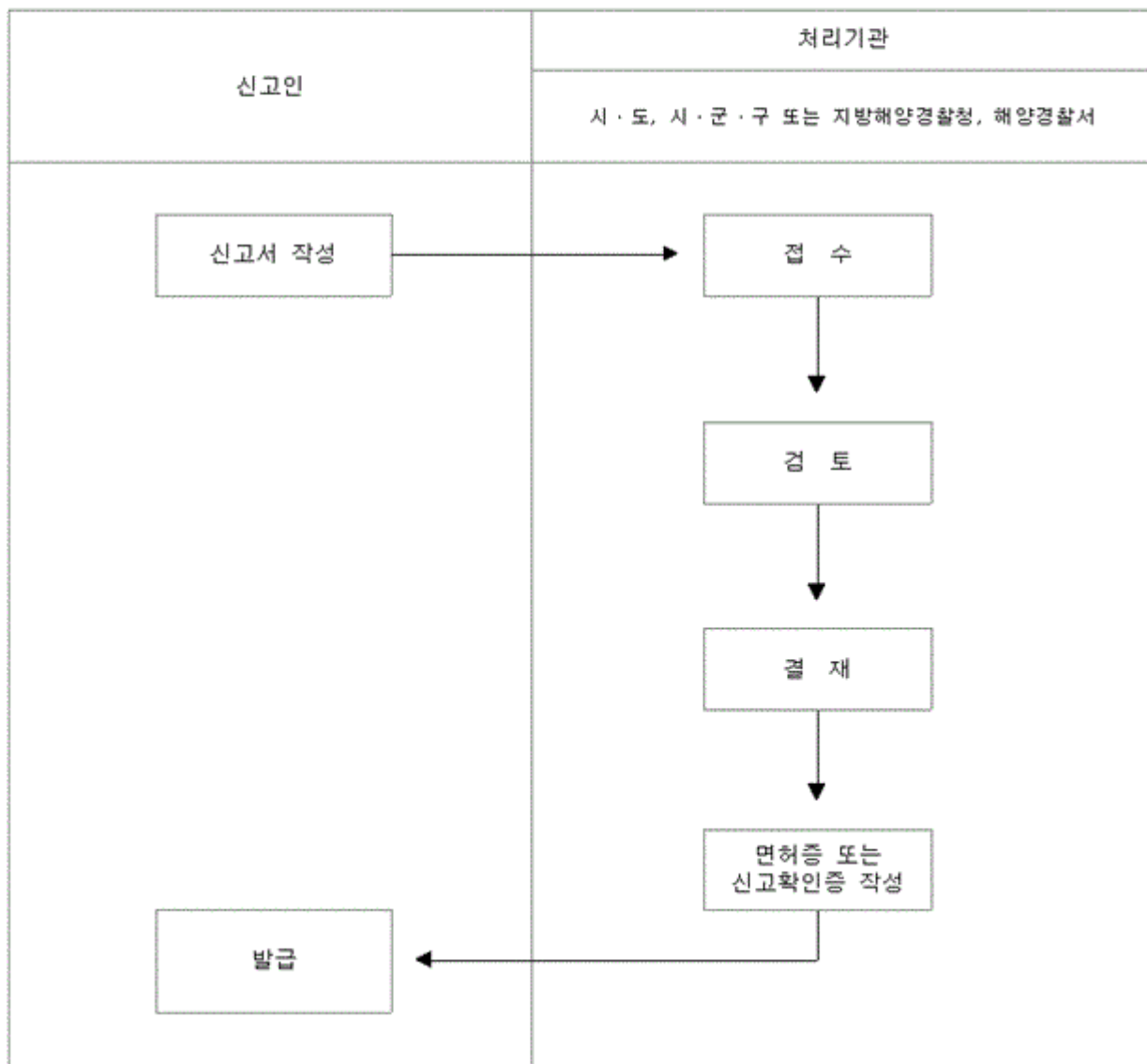
귀하

| | | |
|------------------|-----------------------------|--------------|
| 신 고 인
제 출 서 류 | 운임 산출계 산서 1부(도선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 수 수 료
없 음 |
|------------------|-----------------------------|--------------|

210mm×297mm[백상지 80g/m²]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3호 서식] 삭제 <2012.6.29>

[별지 제24호 서식] 삭제 <2012.6.29>

[별지 제25호 서식] 삭제 <2012.6.29>

[별지 제26호 서식] 삭제 <2012.6.29>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97호, 2024. 12. 20.,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051 - 773 - 5539, 553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낙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낙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낙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낙시”란 낙시대와 낙시줄, 낙시바늘 등 도구(이하 “낙시도구”라 한다)를 이용하여 어류, 패류, 갑각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를 말한다.
2. “낙시인”이란 낙시터에서 낙시를 하거나 낙시를 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3. “낙시터”란 낙시가 이루어지는 바다, 바닷가, 내수면 등의 장소를 말한다.
4. “낙시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낙시터에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 낙시인이 낙시를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편의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5. “낙시터업자”란 낙시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6. “낙시어선업”이란 낙시인을 낙시어선에 승선시켜 낙시터로 안내하거나 그 어선에서 낙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7. “낙시어선”이란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으로서 낙시어선업에 쓰이는 어선을 말한다.
8. “낙시어선업자”란 낙시어선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제25조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9. “미끼”란 수산동물을 낚기 위하여 사용하는 떡밥 등을 말한다.
10. “수면관리자”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면 등을 소유 또는 점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적용한다. <개정 2019. 8. 20., 2022. 1. 11.>

1. 바다
2. 「수산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바닷가
3. 「수산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陸上)의 해수면
4.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 수면(公共用 水面)

5.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유수면(私有水面)
6. 낙시터업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낙시어선업에 대하여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낙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낙시의 관리

제5조(낙시제한기준의 설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낙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마릿수·체장(體長)·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낙시 방법·도구 및 시기 등에 관한 기준(이하 “낙시제한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낙시제한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관할 구역의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제1항에 따라 정한 낙시제한기준보다 강화된 낙시제한기준(기준 항목의 추가를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2021. 4. 13.>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3항에 따라 낙시제한기준이 설정·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낙시인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8. 20., 2021. 4. 13.>

제6조(낙시통제구역) ①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낙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낙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낙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초 지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낙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 구역을 변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낙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낙시통제구역의 명칭 및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공고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낙시통제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④ 제1항에 따른 낙시통제구역의 지정 시 안내판의 규격·내용 및 설치 장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지정·지정해제·변경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8. 20.>

제7조(수면 등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제3조 각 호의 수면 등에서 낙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0.>

1.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2. 낙시도구나 미끼를 낙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3. 제5조에 따른 낙시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행위

제7조의2(낙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낙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8. 20.]

제8조(유해 낙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낙시도구(이하 “유해 낙시도구”라 한다)를 사용 또는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나 관람 또는 전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낙시도구의 종류별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제9조(낙시인 안전의 관리)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낙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낙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
2.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출입금지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에 낙시인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 지침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수면에 관한 사항은 관할 해양경

찰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3장 낙시터업

제10조(낙시터업의 허가)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면 등에서 낙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 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낙시터의 위치·구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 3. 23.>

② 낙시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 등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으려는 면적이 큰 수면 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낙시터업의 허가를 하려면 해당 수면 등의 용도, 수질 등 환경의 오염 상태, 수산자원의 상태, 어업인과의 이해관계 및 낙시인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면 등에서의 낙시터업을 허가한 경우 그 허가한 사항을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6. 5. 29., 2017. 7. 26.>

⑤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수면에서 제1항에 따른 낙시터업의 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6. 5. 29., 2016. 12. 27.>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동일한 위치의 수면 등에 대하여 허가의 신청이 경합(競合)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6. 5. 29.>

제11조(낙시터업의 허가기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낙시터업 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7.>

1. 낙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낙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것
2. 제48조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것
3.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수산물의 안전성보장 및 건전한 낙시문화 조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업 구역의 일정 부분을 이용하는 낙시터업인 경우에는 면허를 받은 양식 어종으로 한정할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장비의 기준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장비의 종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허가의 유효기간) ① 제10조에 따른 낙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또는 공익사업의 시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한 낙시터업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낙시터업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매회 10년 이내에서 2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면허나 허가를 받은 구역의 일정 부분을 이용하는 낙시터업의 경우에는 그 낙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해당 구역의 면허나 허가의 만료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9. 8. 27.>
- ④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의 신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제13조(수면 등 이용의 협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제4호의 수면에서 낙시터업을 하려는 자가 제10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같다.

제14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낙시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8. 12. 31., 2020. 12. 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낙시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낙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경우
 2. 영업정지 기간 중에营业을 한 경우
 3.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을 한 경우
 4.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낙시터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낙시터업을 한 경우
 5. 제11조에 따른 낙시터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6. 낙시터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영업 허가가 취소된 자(같은 항 제6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낙시터업의 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낙시터업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의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31.>
- ④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8. 12. 31.>

제15조(원상회복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낙시터에 설치한 시설·장비나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는 등 낙시터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1. 낙시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낙시터업을 경영한 자
2. 낙시터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
3. 허가받은 낙시터업을 폐업한 자
4.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가 제한된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한 자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낙시터를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원상회복 의무자”라 한다)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또는 원상회복 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낙시터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 ⑤ 삭제 <2016. 5. 29.>

제16조(낙시터업의 등록) ① 제3조제5호 또는 제6호의 수면에서 낙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낙시터의 위치와 구역, 낙시터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 3. 23., 2019. 8. 20.>

- ② 낙시터업의 등록을 하려는 수면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등록하려는 면적이 큰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7조(낙시터업의 등록기준) 시장·군수·구청장은 낙시터업 등록의 신청 내용이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등록을 할 수 있다.

제18조(등록의 유효기간) ① 제16조에 따른 낙시터업 등록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낙시터업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낙시터업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매회 10년의 기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의 신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낙시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낙시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낙시터업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경우
 2.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3.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낙시터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낙시터업을 한 경우
 4. 제17조의 낙시터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낙시터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을 등록이 취소된 자(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낙시터업의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18. 12. 31.>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낙시터업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의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31.>
- ④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8. 12. 31.>

제20조(낙시터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낙시터업자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수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어종(이하 “방류 금지 어종”이라 한다)을 낙시터업자가 경영하는 낙시터에 방류하지 말 것
 2. 수질의 한계기준을 초과하여 낙시터 수질을 오염시키지 말 것
 3. 수생태계 보존의 한계기준을 초과하여 낙시터 수생태계를 훼손시키지 말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나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 ② 제1항에 따른 방류 금지 어종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의 한계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낙시터이용객 안전 등을 위한 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낙시터이용객의 안전과 사고 방지 및 그 밖에 낙시터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낙시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영업의 일시정지
2. 인명안전에 관한 설비의 비치, 착용 및 관리
3. 그 밖에 낙시터이용객의 안전과 사고 방지 및 낙시터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 8. 20.]

제21조(납시터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납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납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납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과 장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의 납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전의 납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제22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14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납시터업자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제21조제1항에 따라 납시터업을 승계한 납시터업자에게 승계된다.

② 제21조제1항에 따라 납시터업을 승계한 납시터업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1항에 따라 납시터업을 승계한 납시터업자가 그 영업의 승계 시에 종전의 납시터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또는 종전의 납시터업자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폐쇄조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납시터를 폐쇄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
2. 제14조제1항이나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폐쇄조치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납시터의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삭제
2. 해당 납시터가 적법한 납시터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3. 해당 납시터의 시설물이나 그 밖에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시터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납시터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남시터를 폐쇄하려면 미리 해당 남시터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긴급히 폐쇄하여야 할 경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에 따른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남시터를 폐쇄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4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남시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남시터업을 허가 또는 등록의 유효기간 내에 폐업하려는 경우
2.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
3. 휴업 후 영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
4.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제4장 남시어선업

제25조(남시어선업의 신고) ① 남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남시어선의 대상·규모·선령·설비·안전성 검사, 선장의 자격, 전문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신고요건”이라 한다)을 갖추어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신고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남시어선업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남시어선의 선적항(船籍港)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개정 2019. 8. 20.>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신고요건에 적합하면 신고인에게 남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남시어선업 신고의 유효기간은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이나 공제의 계약기간으로 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 8. 2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절차와 신고확인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8. 20.>

제25조의2(남시어선의 안전성 검사) ① 제25조제1항에 따라 남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남시어선의 선체, 기관 및 설비 등에 대하여 매년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어선법」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남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시기, 절차, 기준, 유효기간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0.]

제26조(신고사항 등의 보고) ① 제25조제1항에 따라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받은 사항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바다에서 하는 낚시어선업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받은 사항을 즉시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27조(영업구역) ①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하되, 외측한계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접한 시·도 간 수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영업구역과 해당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영업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31.>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영해의 범위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수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의 영업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영업구역 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③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시·도지사 및 해양경찰청장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영해 바깥쪽 해역을 영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제28조(승선정원) 낚시어선의 승선정원은 「어선법」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적힌 어선원 및 어선원 외의 사람 각각의 최대승선인원으로 한다. <개정 2019. 8. 20.>

제28조의2(낚시어선 안전요원의 승선 등) ①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의 규모, 영업시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낚시승객의 안전을 담당하는 자(이하 “낚시어선 안전요원”이라 하며 선원에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승선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요원의 자격기준 및 임무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0.]

제29조(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등) ①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낚시어선의 안전을 점검하고 기상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승객에게 위해(危害)가 없도록 수면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낚시어선을 조종하여야 한다.

②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5. 29., 2017. 10. 31., 2019. 8. 20.>

1. 영업 중 낚시를 하는 행위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4세 미만의 사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등 승선에 부적격한 사람을 승선하게 하는 행위

3. 그 밖에 낙시어선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끼친다고 인정되는 행위

③ 낙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낙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면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④ 낙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출항하기 전 승선한 승객에게 안전사고 예방 및 수산자원 보호,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1. 안전한 승·하선 방법, 인명구조 장비와 소화설비의 보관장소와 사용법, 비상신호, 비상시 집합장소의 위치와 피난요령, 인명구조에 관련된 기관의 유선번호 및 유사시 대처요령 등 안전에 관한 사항

2. 포획금지 체장·체중 등 수산자원보호에 관한 사항

3. 쓰레기 투기 금지 등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제29조의2(운항규칙) ①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장소에서의 낙시어선 운항규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7. 25.>

② 낙시어선업자와 선원은 제1항에 따른 운항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30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등) ① 낙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낙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낙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낙시어선을 조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술에 취한 상태”란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1. 6. 15., 2023. 7. 25.>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관계 공무원”이라 한다)은 낙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낙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그 측정에 따라야 한다.

1. 경찰공무원

2. 시·군·구 소속 공무원 중 수상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근무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해당 낙시어선업자 및 선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측정의 결과에 불복하는 낙시어선업자 및 선원에 대하여는 해당 낙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⑤ 관계 공무원은 낙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측정결과가 제1항 후단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낙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 대하여 조종·승선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약물복용의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낙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낙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약물복용의 상태에 있는 낙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낙시어선을 조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약물복용의 상태”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6. 4.>

제32조(낙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의 게시) 낙시어선업자는 낙시어선업 신고확인증과 제35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하는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객이 잘 볼 수 있도록 낙시어선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33조(출입항 신고 등) ① 낙시어선업자는 승객을 승선하게 하여 항구·포구 등에 출항이나 입항(이하 “출입항”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의 출입항 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출입항신고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출항 신고를 하려는 낙시어선업자는 그 신고서에 해당 낙시어선에 승선할 선원과 승객의 명부(이하 “승선자명부”라 한다)를 첨부하여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항 신고를 하려는 낙시어선업자는 승선하는 승객으로 하여금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자명부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낙시어선업자는 승객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여 승선자명부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④ 낙시어선업자는 승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선자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후단에 따른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⑤ 낙시어선업자는 해당 낙시어선에 승선자명부(전자문서로 된 명부는 제외한다)의 사본을 3개월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24. 12. 20.>

제34조(출항의 제한) ①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시간, 기상 및 해상 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고려하여 낙시어선업자·선원·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낙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② 제1항에 따른 출항제한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낙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 및 그 밖에 낙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낙시어선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시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6. 5. 29., 2017. 7. 26.>

1. 영업시간이나 운항 횟수의 제한

2. 영업구역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

2의2. 인명안전에 관한 설비의 비치 및 관리

3. 그 밖에 낙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 및 낙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낙시어선의 안전운항,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 수질오염의 방지 및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낙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낙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잘 볼 수 있는 출입항 장소에 낙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표기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5. 29.>

1. 제1항에 따른 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낙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준수사항 등

3. 제34조제2항에 따른 출항제한의 기준

4. 제3조 각 호의 수면 등에 유류(油類)·분뇨·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항

제36조(낙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 낙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낙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낙시어선의 승객은 낙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8. 20.>

1. 제29조제3항에 따른 구명조끼 착용에 관한 사항

2. 제33조제3항에 따른 승선자명부 작성 및 신분증 확인에 관한 사항

3. 제35조제2항에 따라 낙시어선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제37조(사고발생의 보고) ① 낙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고 장소가 내수면인 경우에는 사고발생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수면인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사고의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승객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을 경우

2. 충돌, 좌초 또는 그 밖에 낙시어선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인명 구조 등 사고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38조(영업의 폐쇄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낙시어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1.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낙시어선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낙시어선업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낙시어선업을 신고한 경우
 3. 「어선법」에 따라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5. 낙시어선업자,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6. 제25조에 따른 낙시어선업의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7. 제27조에 따른 낙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
 8. 낙시승객을 승선시킨 상태에서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낙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낙시어선을 조종한 경우
 9. 낙시승객을 승선시킨 상태에서 제31조를 위반하여 낙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낙시어선을 조종한 경우
 10. 제48조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영업이 폐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낙시어선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0.>
-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39조(폐업신고 등) ① 낙시어선업을 폐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바다에서의 낙시어선업을 폐업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② 제38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2019. 8. 20.>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낙시어선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2018. 12. 31., 2019. 8. 20., 2020. 12. 22.>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낙시어선업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의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2019. 8. 20.>

제5장 미끼의 관리

제40조(미끼기준의 설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끼의 종류별로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이하 “미끼기준”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미끼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미끼의 제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미끼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폐기 등의 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0조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미끼가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미끼를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미끼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그 미끼를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해당 미끼의 안전상의 위해가 제거될 수 있도록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압류 또는 폐기 등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처분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6장 낙시 및 낙시 관련 산업의 지원·육성

제43조(낙시진흥기본계획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낙시 및 낙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낙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낙시진흥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낙시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낙시 진흥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낙시 관련 산업과 수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3. 낙시 대상 수산자원의 조성 및 보호에 관한 사항
4. 낙시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낙시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낙시의 현황과 낙시 관련 산업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낙시진흥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8. 12. 31.>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낙시진흥기본계획과 제4항의 연차별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 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 3. 23.>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낙시진흥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31.>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낙시진흥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31.>

제44조(우수낙시터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나 제16조에 따라 낙시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낙시터 중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낙시터를 우수낙시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우수낙시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낙시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④ 우수낙시터의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낙시터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낙시터의 시설·운영 또는 환경의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제45조(낙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육성)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 낙시인과 낙시 관련 업자 등의 권익보호, 건전한 낙시문화의 조성 및 낙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낙시 및 낙시 관련 산업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낙시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낙시 관련 단체나 비영리법인이 그 회원과 낙시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과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검정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낙시도구의 유해물질 허용 기준 적합 여부와 제40조에 따른 미끼기준 적합 여부를 검정(이하 “검정”이라 한다)하기 위

하여 필요한 인력 및 설비를 갖춘 기관을 검정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명칭, 소재지, 검정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0.>

③ 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검정방법, 변경신고의 절차, 기간, 방법 등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9. 8. 20.>

[본조신설 2016. 5. 29.]

제45조의3(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정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정 업무를 한 경우
3. 검정 결과를 거짓으로 내준 경우
4.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검정 업무의 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46조(명예감시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남시터의 안전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 및 건전한 남시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남시인 및 남시 관련 단체나 법인의 임직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감시·지도 및 계몽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감시원에게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자격, 증표, 위촉방법 및 임무와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내용 및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제47조(교육·홍보) ① 남시터업자, 남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남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5. 29.>

② 제25조에 따른 남시어선업을 하려는 자와 제3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자는 미리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해당 연도에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19. 8. 20.>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미리 전문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후 6개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9. 8. 20.>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남시문화의 조성 및 남시인의 복지향상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9. 8. 20.>

20.>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9. 8. 20.>

⑥ 남시어선업자는 선원이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선원을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6. 5. 29., 2019. 8. 20.>

제7장 보칙

제48조(보험 등 가입) 남시터업자와 남시어선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시터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남시어선의 승객 및 선원의 피해를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제10조제1항에 따라 남시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라 남시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3. 제21조제3항에 따라 남시터업의 승계 사실을 신고하는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라 남시어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5. 제44조제2항에 따라 우수남시터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제50조(출입·검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남시 관련 사업의 지도·감독과 미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남시도구를 제조·수입·판매·보관하는 자, 남시터업자, 남시어선업자, 미끼를 제조·수입·판매·보관하는 자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출입하여 시설·장부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8. 20., 2022. 1. 11.>

1. 남시도구의 제조·수입·판매·보관 장소
2. 제10조 및 제16조에 따라 남시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영업 중인 남시터
3. 제25조에 따라 남시어선업 신고를 하여 영업 중인 남시어선
4. 미끼의 제조·수입·판매·보관 장소
5. 「수산업법」 제62조에 따른 유어장 등 그 밖의 남시 관련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출입·검사 등을 할 때에는 남시터업자, 남시어선업자 등의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등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51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5. 29.>

1. 제14조에 따른 남시터업 허가의 취소
2. 제19조에 따른 남시터업 등록의 취소
3. 제38조에 따른 남시어선업의 영업폐쇄명령
4. 제44조제3항에 따른 우수남시터 지정의 취소
5. 제45조의3에 따른 검정기관 지정의 취소

제5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남시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5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8장 벌칙

제5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유해 남시도구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2. 제10조제1항에 따른 남시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시터업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남시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4. 제2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게시문 등이나 봉인을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5. 제41조를 위반하여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미끼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6. 15., 2016. 5. 29., 2019. 8. 20., 2023. 7. 2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남시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른 남시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남시터업을 한 자
3. 제2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방류 금지 어종을 남시터업자가 경영하는 남시터에 방류한 자

- 3의2. 제20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명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 4.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낙시어선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낙시어선업을 한 자
- 5.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낙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낙시어선을 조종하게 한 자
- 6.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자
- 6의2.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31조를 위반하여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낙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약물복용의 상태에 있는 자에게 낙시어선을 조종하게 한 자
- 6의3. 제33조제1항에 따른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출입항한 자
- 7. 제34조제1항에 따른 출항제한 조치를 위반하고 출항한 자
- 8.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명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 9. 제38조제1항에 따라 영업이 폐쇄된 낙시어선업을 계속한 자

제5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6. 15., 2016. 5. 29., 2018. 12. 31., 2019. 8. 20., 2023. 7. 25.>

- 1.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낙시통제구역에서 낙시를 한 자
- 2. 제7조제1호를 위반하여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
- 3. 제7조제2호를 위반하여 낙시도구나 미끼를 낙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린 자
- 4. 제7조제3호에 따른 낙시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잡은 자
- 5. 제7조의2를 위반하여 낙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한 자
- 6. 제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유해 낙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한 자
- 7.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낙시터업자와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 8. 제20조의2제3호에 따른 명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 9.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낙시터업의 승계 사실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

10.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낙시어선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1. 제29조제2항·제3항에 따른 낙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를 위반한 자
- 11의2. 제29조제4항에 따른 낙시어선업자 등의 출항 전 안내 의무를 위반한 자
12.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30조제5항에 따른 조종·승선 제한 등의 조치를 위반한 자
13. 제33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승객으로 하여금 승선자명부를 작성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14. 제33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승선자명부 기재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
15.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선을 거부하지 아니한 자
16. 제33조제5항을 위반하여 승선자명부의 사본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17.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명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18.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고발생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고 수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9. 제41조를 위반하여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미끼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저장·운반 또는 진열한 자
20. 제42조에 따른 압류·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미끼에 대한 회수·폐기 또는 안전상의 위해제거 조치 명령을 거부·방해·기피한 자
21. 제47조제1항에 따른 낙시터업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22.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낙시어선업을 한 자
23.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선원을 근무하게 한 자
24. 제50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25. 제5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6. 5. 29., 2019. 8. 20.>
 1.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낙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거부·기피한 자
 2. 제24조에 따른 낙시터업의 휴업·폐업·재개 또는 휴업기간 연장 신고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낙시어선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낙시어선업을 한 자
 - 3의2. 제28조의2를 위반한 자
 - 3의3. 제29조의2를 위반한 자
 4. 제32조를 위반하여 낙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을 낙시어선에 게시하지 아니한 자
 5. 삭제<2016. 5. 29.>
 6. 제36조를 위반하여 낙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7. 제39조에 따른 낙시어선업의 폐업신고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자
 8.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13. 3. 23.>

부칙 <제10458호, 2011. 3.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제3항 및 제55조제1항제13호는 공포 후 2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낙시어선업법은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낙시어선업법」, 종전의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낙시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낙시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의 유효기간 내에서는 제10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낙시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낙시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낙시업을 계속하려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신규로 낙시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낙시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제11조에 따라 낙시업의 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의 유효기간 내에서는 제16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낙시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낙시업 신고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낙시업을 계속하려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신규로 낙시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6조(낙시어선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낙시어선업법」 제4조에 따라 낙시어선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라 낙시어선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그 유효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한강에서의 낙시어선업 신고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낙시어선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에 관하여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낙시어선업을 신고한 자는 이 법에 따라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8조(낙시어선업의 영업의 폐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낙시어선업자의 위반행위에 관하여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낙시어선업법」에 따른다.

제9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낙시어선업법」과 종전의 「내수면어업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후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적용시한까지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중 낙시업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②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2) 중 “「낙시어선업법」 제4조의 규정”을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로 한다.

③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낙시어선업법」”을 “「낙시 관리 및 육성법」”으로 한다.

④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제5호 중 “「낙시어선업법」 제2조”를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낙시어선업법」,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낙시어선업법」,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801호, 2011. 6. 15.> (해사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7항은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법률 제10458호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후단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제5항”을 “「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으로 한다.

제53조제2항제5호·제6호 및 제55조제1항제8호 중 “「해상교통안전법」”을 각각 “「해사안전법」”으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4>까지 생략

<275>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항, 제26조제2항, 제27조 단서, 제40조제1항, 제42조제1항·제4항, 제43조제1항·제2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44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6조제1항·제2항, 제47조제2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제2항 및 제55조제3항 중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8조제1항 단서, 제10조제1항 전단, 제12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전단, 제16조제1항 전단, 제18조제3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1항제4호, 제21조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2조, 제33조제1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1항 전단, 제42조제3항, 제44조제1항·제4항, 제46조제3항,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0조제5항 중 “농림수산물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0458호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제1항 중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수산물식품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27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862호, 2013. 6. 4.> (화학물질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후단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에 따른”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부터 2(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2844호, 2014. 11. 1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7>까지 생략

<228> 남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26조제1항 후단,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9조제1항 후단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서장”을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22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224호, 2016. 5. 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남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2@ 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14240호, 2016. 5. 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6호, 제15조제5항 및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5조의2, 제45조의3 및 제51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80호, 2016. 12. 27.> (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 까지 생략

1* 남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2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1(부터 <65>까지 생략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7>까지 생략

<238> 납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0조제4항, 제26조제1항 후단,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9조제1항 후단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3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008호, 2017. 10. 31.> (어선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납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5604호, 2018. 4. 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01호, 2018. 12. 31.> (부가가치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납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16150호, 2018. 12. 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04호, 2019. 8.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낙시어선업 신고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 낙시어선업 신고는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본다. 이 경우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낙시어선업자가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이나 공제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3조(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의 재신고 금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영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의 폐업신고 금지 및 전문교육 이수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로 영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568호, 2019. 8. 27.> (양식산업발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 「수산업법」 제8조 ”를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로, “ 양식어업 ”을 “ 양식업 ”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 「수산업법」 ”을 “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으로 한다.

⑩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7022호, 2020. 2.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53호,2020. 12. 22.> (부가가치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납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제8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5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제8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8056호,2021. 4. 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55호,2022. 1. 11.> (수산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납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8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수산업법」 제69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산업법」 제65조”를 “「수산업법」 제62조”로 한다.

④부터3% 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 <제19573호,2023. 7. 25.> (해상교통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남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제53조제2항제5호、제6호、제6호의2 및 제55조제1항제12호 중 “「해사안전법」”을 각각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하고, 제30조제1항 후단 중 “「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으로 한다.

⑦부터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0597호,2024. 12.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6. 3. 26.] [대통령령 제35396호, 2025. 3. 25.,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051 - 773 - 5538, 5539

제1조(목적) 이 영은 「남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시 대상 수산동물) 「남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연체동물(軟體動物) 중 두족류(頭足類)
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동물

제3조(남시제한기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남시제한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제4조(남시통제구역의 공고)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남시통제구역의 명칭
2. 남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남시통제구역의 지정·변경·해제 사유
4. 남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남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남시통제구역 지정·변경·해제 연월일
6. 남시통제구역에서 남시를 한 자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

제5조(남시도구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남시도구의 종류별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 11. 22.>

제6조(남시인 안전의 관리)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4. 17., 2024. 2. 6.>

1.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호우·대설·태풍·강풍·풍랑·폭풍해일에 관한 특보 또는 같은 영 제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태풍·풍랑·폭풍해일에 관한 해양기상특보가 발표된 경우
2.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남시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危害)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남시터업의 허가) ①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 2. 16.>

1. 남시터의 명칭
2. 남시터 관리선
3. 남시터의 수면에 설치된 부유형(浮游型) 및 고정형(固定型) 시설물(이하 “수상시설물”이라 한다)

4. 남시터의 최대수용인원

② 법 제1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개정 2016. 11. 22.>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지구별수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 「수산자원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어업인단체, 그 밖에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지역의 농업인 또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된 법인
2. 남시터업을 5년 이상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은 자
3. 수생태계 보전 및 수산자원 보호나 건전한 남시문화 조성 및 남시산업 발전에 관한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순위에서 배제된다. <개정 2020. 8. 26.>

1. 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수생태계 보전 및 수산자원 보호와 관련하여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내수면어업법」(해당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제8조(남시터업의 허가기준)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남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남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수산물의 안전성보장 및 건전한 남시문화 조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제9조(허가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 16.>

1. 남시터업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물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남시 대상 수산동물의 산란·성육(成育) 등 번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남시터업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사용승인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제10조(수면 등 이용의 협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3조에 따라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시터업에 이용되는 수면의 위치와 면적
2. 남시터에 설치되는 시설과 장비
3. 남시터업을 하려는 기간
4. 수면사용료

제11조(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국방이나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해당 수면에서 남시터업을 하기 위하여 원상회복의 대상인 시설이나 장비 등을 재사용하여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해양환경이나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12조 삭제 <2016. 11. 22.>

제13조(남시터업의 변경등록)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남시터의 위치와 구역
2. 남시터의 명칭
3. 남시터 관리선
4. 수상시설물
5. 남시터의 최대수용인원

제14조(등록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남시터업 등록을 하려는 수면의 임대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제15조(방류 금지 어종 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류 금지 어종은 다음 각 호의 어종을 말한다. <개정 2015. 2. 16.>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에 해당하는 어종
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어종

3.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이식(移植)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어종

② 법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물환경 보존의 한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8. 1. 16.>

1. 법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제3호라목1)에 따른 생활환경 기준을 유지할 것
2. 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의 수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제3호나목2)에 따른 생활환경 기준 중 “약간 나쁨” 이상에 해당하는 기준을 유지할 것

제16조(남시어선업의 신고요건 등)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 <개정 2019. 2. 8., 2020. 2. 18.>

1. 남시어선이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서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일 것
2. 남시어선이 선령(船齡) 20년 이하인 목선(木船)이거나 선령 25년 이하인 강선(鋼船)·합성수지선·알루미늄선일 것
3. 남시어선에 별표 4에 따른 설비를 갖추어 것
4. 법 제2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남시어선의 안전성 검사를 받았을 것
5. 남시어선의 선장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 것
 - 가.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또는 그 상위등급의 해기사 면허를 받았을 것
 - 나. 「선박직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할 것
6.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할 것(최초로 남시어선업을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말한다.<개정 2015. 12. 30.>

1. 어선번호
2. 어선의 명칭
3. 총톤수
4. 주 영업장소 및 영업시간
5. 선적항(船籍港)의 명칭
6. 어업허가번호 또는 관리선 지정번호
7.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여부와 가입한 남시어선의 최대승선인원(어선검사증서에 적힌 것을 말한다)
8. 남시어선업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9. 남시어선의 선원 중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해기사 면허 소지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해기사 면허의 직종 및 등급

③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신고사항”이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7조(영업구역) 낙시어선업자가 낙시인을 낙시어선에 승선시켜 낙시터로 안내할 뿐 그 어선에서 낙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낙시인의 승선지점과 하선지점 중 1개의 지점이 그 낙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특별시장·광역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관할 수역에 있고, 다른 1개의 지점이 연접한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에 있을 때에는 해당 낙시어선업의 영업은 법 제27조 본문에 따른 낙시어선업의 영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제18조(공동영업구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그의 관할 수역과 연접한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법 제27조 단서에 따른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사이에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영업구역에 관한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회에서 공동영업구역에 관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구역을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회에서 공동영업구역에 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수역을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3. 1. 10.>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지사의 관할 구역에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낙시어선업의 신고를 한 낙시어선업자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한 경우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8조의2(운항규칙) ① 낙시어선업자와 선원이 준수해야 하는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낙시어선 운항규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5.>

1.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2.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유효한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거리에서 선박운항정지(정선)할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운항해야 한다.
3. 시계(視界)를 제한받는 때나 교량 등의 부근 및 하천 폭이 좁은 구역에서는 속도를 줄여 운항하여야 한다.

4. 시계가 제한된 구역에서 앞쪽에 다른 선박이 있는 경우 왼쪽으로 진로를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5. 다른 선박과 마주칠 때에는 진로를 오른쪽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6. 다른 선박과 같은 방향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근접하거나 경쟁적으로 운항해서는 아니 된다.
 7. 다른 선박을 앞지르기하려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당하는 선박을 완전히 앞지르기하거나 그 선박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8. 남시어선과 다른 선박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오른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9. 선착장 등으로 들어오는 남시어선은 선착장 등의 밖으로 나가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10. 남시가 금지되어 있는 장소에 정박하거나 승객을 승선·하선시켜서는 아니 된다.
 11. 야간운항을 하는 경우 안전 운항 및 승객의 승선·하선에 필요한 불빛을 표시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6. 11. 22.]

제19조(출항의 제한)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남시어선의 출항제한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2., 2018. 4. 17., 2019. 2. 8., 2024. 2. 6.>

1.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초당 풍속 12미터 이상 또는 파고(波高) 2미터 이상으로 예보가 발표된 경우
2.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호우·대설·태풍·강풍·풍랑·폭풍해일에 관한 특보 또는 같은 영 제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태풍·풍랑·폭풍해일에 관한 해양기상특보가 발표된 경우
3. 기상청장이 제2호에 따른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표하기 전에 이를 사전에 알리기 위한 정보를 발표한 경우
4. 안개 등으로 인하여 해상에서의 시계가 1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5.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다만, 별표 4 제1호카목 및 타목에 따른 설비를 갖추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을 제한하지 않는 시간대에 영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출입항신고기관(이하 “출입항신고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해상상황의 급작스런 악화 등으로 인하여 남시어선의 출항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0조(미끼기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미끼의 종류별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1조(남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육성)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남시 및 남시 관련 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낙시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사업
2. 낙시의 저변 확대를 위한 낙시문화 홍보 사업
3. 낙시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4. 쾌적하고 안전한 낙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5. 건전한 낙시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
6. 낙시 대상 어종의 개발·관리 및 외래 도입 어종의 이용을 위한 연구 사업
7. 그 밖에 낙시 및 낙시 관련 산업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낙시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5. 3. 25.>

1. 농어업·농어촌의 발전, 낙시인과 낙시 관련 업자 등의 권익보호, 건전한 낙시문화의 조성 및 낙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일 것
2. 제1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낙시 관련 전문 인력을 보유할 것

제21조의2(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20. 2. 18.>

② 법 제45조의2제2항에서 “명칭, 소재지, 검정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0. 2. 18.>

1. 검정기관의 명칭
2. 검정기관의 대표자
3. 검정기관의 소재지
4. 검정대상
5. 제1항의 지정기준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장비

[본조신설 2016. 11. 22.]

[제목개정 2020. 2. 18.]

제22조(보험 등 가입) ① 낙시터업자와 낙시어선업자는 법 제4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족어선원에 대한 보험이나 공제는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낙시터업자의 경우: 낙시터의 최대수용인원(낙시터 관리선을 둔 경우에는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관리선의 최대승선인원을 합산한다)의 피해를 보전(補填)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
2. 낙시어선업자의 경우: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낙시어선의 최대승선인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선원의 경우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

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어선원등의 재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6. 11. 22.>

1.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2.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및 검정 업무의 정지
3. 법 제51조제5호에 따른 청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 의무의 이행 여부 점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1. 22.>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남시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1. 22., 2020. 2. 18.>

1.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우수남시터의 지정
 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위촉
 3.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남시터업자와 남시어선업자에 대한 전문교육
 4.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건전한 남시문화의 조성 및 남시인의 복지향상 등을 위한 교육·홍보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1. 22.>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남시터업의 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남시터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남시터업 승계 사실의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25조에 따른 남시어선업 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33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 3. 27.]

제24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5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 3. 24.]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칙 <제24097호, 2012. 9.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남시어선업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남시도구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및 미끼기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제조되었거나 수입계약이 체결된 남시도구와 미끼는 별표 1과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2013년 3월 10일까지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할 수 있으며, 2013년 9월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어구에 대하여, 남시업의 경우에는 일정한 수면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를 갖추어”를 “어구에 대하여”로 한다.

②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마목 중 “「남시어선업법」”을 “「남시 관리 및 육성법」”으로 한다.

③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12호 중 “「남시어선업법」 제17조”를 “「남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로 한다.

④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4. 「남시 관리 및 육성법」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남시어선업법 시행령」,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남시어선업법 시행령」,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455호, 2013. 3. 2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남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1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7항 및 제18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종류란 나목6), 같은 표 제2호의 종류란 가목3)·나목3), 같은 표 비고 및 별표 4 비고 중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물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제25751호, 2014. 11. 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0>까지 생략

<381> 남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38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840호, 2014. 12. 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107호, 2015. 2.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74호, 2015. 12. 30.>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7603호, 2016. 11. 22.>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1조의2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51호,2016. 12. 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960호,2017. 3. 27.>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8211호,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1>까지 생략

<312> 남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313>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583호,2018. 1. 16.>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남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⑩부터4^ 까지 생략

부칙 <제28804호,2018. 4. 17.> (기상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남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에 따른 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강풍、풍랑、안개 주의보 또는 경보”를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호우、대설、폭풍해일、태풍、강풍、풍랑 주의보 또는 경보”로 한다.

제19조제1호 중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에 따른 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강풍、풍랑、안개 주의보 또는 경보”를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호우、대설、폭풍해일、태풍、강풍、풍랑 주의보 또는 경보”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29520호, 2019. 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1호의 구분란, 같은 호 가목, 나목, 라목부터 사목까지, 자목부터 타목까지 및 같은 표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표 제1호아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9. 6. 25.>

제2조(남시어선업 신고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은 어선으로서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남시어선업의 신고가 된 사실이 있는 어선에 대한 남시어선업의 신고요건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923호, 2019. 6. 25.>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32호, 2020. 2.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1호파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남시어선의 선장의 승무경력 등에 관한 특례) 제16조제1항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2월 20일까지는 같은 목의 개정규정 중 “「선박직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할 것”을 “「선박직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승무경력이 1년 이상이거나 6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할 것”으로 한다.

제3조(남시어선업의 신고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남시어선업을 신고하여 남시어선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제1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30509호,2020. 3. 3.>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77호,2020. 8. 26.>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남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 「수산업법」 ”을 “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으로 한다.

⑨부터3&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1380호,2021. 1. 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3225호,2023. 1. 10.> (수산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남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 「수산업법」 제88조 ”를 “ 「수산업법」 제95조 ”로 한다.

⑧부터4*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34153호,2024. 1. 16.>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남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2호러목의 위반행위란 중 “ 「해사안전법」 ”을 “ 「해상교통안전법」 ”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34194호, 2024. 2. 6.> (기상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남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호우、대설、태풍、강풍、풍랑、폭풍해일에 관한 특보 또는 같은 영 제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태풍、풍랑、폭풍해일에 관한 해양기상특보가 발표된 경우

제1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호우、대설、태풍、강풍、풍랑、폭풍해일에 관한 특보 또는 같은 영 제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태풍、풍랑、폭풍해일에 관한 해양기상특보가 발표된 경우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35019호, 2024. 11. 26.> (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96호, 2025. 3. 25.>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20호, 2026. 3. 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납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6. 11. 22.>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제5조 관련)

납시도구별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납시도구의 종류 | 유해물질명 | 용출 허용기준(mg/kg) |
|------------------------|---------|----------------|
| 납싯봉, 납싯바늘,
납시찌, 납싯줄 | 납(Pb) | 90 이하 |
| | 비소(As) | 25 이하 |
| | 크로뮴(Cr) | 60 이하 |
| | 카드뮴(Cd) | 75 이하 |

비고

1. 납싯바늘 및 납시찌의 경우에는 금속재료를 추가한 경우에 한정한다.
2. 납싯줄의 경우에는 주원료가 금속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삭제 <2016. 11. 22.>

■ 남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3.3.23>

남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남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기준

(제8조제1항 관련)

| 구분 | 종류 | 기준 |
|-----------------------|--|---|
| 1. 남시인의 안전에 필요한 시설·장비 | 가. 남시터에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1) 구명부환(救命浮環) 및 구명줄
2) 소화기
3) 붕대, 거즈 등 구급약품
나. 수상시설물에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1) 선체(船體)
2) 배수설비
3) 계선 및 계류설비
4) 전기설비
5) 구명 및 소방 설비 등 안전설비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장비 | 추락사고 발생 시 남시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적합할 것
화재사고 발생 시 화재의 확산 방지 및 진압에 적합할 것
부상당한 남시인에 대한 응급처치에 적합할 것
부양성 및 복원성이 있는 선체일 것
시설물의 규모에 적합한 설비일 것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시설물의 위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적합한 설비일 것
수상시설물에 설치하는 전기기계의 안전성에 적합한 설비일 것
추락사고 및 화재사고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보호에 적합한 설비일 것 |
| 2. 남시인의 편의에 필요한 시설·장비 | 가. 남시터에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1) 화장실 등 위생설비
2) 수거한 쓰레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 | 남시터를 이용하는 남시인의 위생 보호에 적합한 설비일 것
남시터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를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일 것 |

| | | |
|------------------------------|--|---|
| | <p>설·장비</p> <p>나. 수상시설물에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p> <p>1) 화장실 등 위생설비</p> <p>2) 쓰레기통 등 쓰레기를 보관할 수 있는 설비</p> <p>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장비</p> | <p>수상시설물을 이용하는 낙시인의 위생보호에 적합한 설비일 것</p> <p>수상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를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일 것</p> |
| <p>3. 낙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p> | <p>가. 낙시터 관리 시설</p> <p>나. 방송 또는 통신 시설</p> <p>다. 낙시터 관리선(낙시터를 관리하거나 낙시인을 수상시설물 등으로 운송하는 데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p> | <p>낙시터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업무에 적합한 시설일 것</p> <p>낙시터의 운영·관리 및 비상상황의 전파 등에 적합한 시설일 것</p> <p>「어선법」 또는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총톤수 10톤 미만의 어선 또는 선박일 것</p> |

비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장비의 수량과 세부 기준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8. 1. 16.>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수산물의 안전성보장 및 건전한 낙시문화 조성
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의 종류** (제8조제2항 관련)

| 구분 | 종류 |
|--|--|
| 1.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및 수산물의 안전성보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 |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
| |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
| | 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 |
| | 라.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
| |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
| 2. 건전한 낙시문화 조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 |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이나 낙시를 이용하여 낙시터에서 사행행위 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이나 장비 |
| | 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이나 장비 |

■ 남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0. 2. 18.>

남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 (제16조제1항제3호 관련)

| 구분 | 설비 |
|------------|--|
| 1. 안전·구명설비 | 가. 최대승선인원의 1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 이 중 20퍼센트 이상은 어린이용으로 하여야 한다.
나. 최대승선인원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
다. 지름 10mm 이상, 길이 30m 이상인 구명줄 1개 이상
라. 가까운 무선국 또는 출입항신고기관 등과 상시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
마. 난간 손잡이(hand rail)
바. 유효기간 이내의 비상용 구급약품세트(붕대, 거즈, 소독약, 해열제, 소화제가 포함되어야 한다)
사. 자기점화등(自己點火燈) 1개 이상
아. 최대승선인원의 100퍼센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구명뗏목(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남시어선에 한정한다)
자. 선박 자동식별장치(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남시어선에 한정한다)
차. 승객이 이용하는 선실에는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2020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남시어선에 한정한다)
카. 항해용 레이더(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영업하는 남시어선에 한정한다)
타. 위성 비상 위치 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를 말하며,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영업하는 최대승선인원 13명 이상인 남시어선에 한정한다)
파. 구명조끼에 부착할 수 있는 등(燈,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 영업하는 남시어선에 한정한다) |
| 2. 소화설비 | 가. 총톤수 5톤 미만 남시어선의 경우: 2개 이상의 간이식 소화기
나. 총톤수 5톤 이상 남시어선의 경우: 2개 이상의 휴대식 소화기 |
| 3. 전기설비 | 남시인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조명 등의 전기설비 |
| 4. 그 밖의 설비 | 가. 분뇨를 수면으로 배출하지 않는 방식의 화장실
나. 용량이 40리터 이상인 쓰레기통 2개 이상
다. 삭제 <2019. 2. 8.>
라. 삭제 <2019. 2. 8.>
마. 삭제 <2019. 2. 8.>
바.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

설비는 같은 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 남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1. 5.>

미끼의 종류별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제20조 관련)

| 미끼의 종류 | 특정물질의 함량기준 | | | | | | | | | | |
|---|---|-----|----------------|--------|------------|---------|-------------|---------|-------------|---------|---------|
| 1. 가공미끼[어분(생선가루)·감자전분 등 동물성·식물성 물질을 주원료로 하여 열처리·혼합 등의 제조과정을 거쳐 생산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p>가. 다음의 물질은 가공미끼의 원료 등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체 또는 수산동물 등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현저히 부패 또는 변질된 물질 2) 생배설물, 소변, 장 내용물, 수술 후 적출물(반추위추출물은 제외한다) 3) 목재보호제(약품) 처리를 한 나무 또는 톱밥 4)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배출된 하수 슬러지 5) 비닐 등 농어업용 포장재 <p>나. 다음의 물질은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만 가공미끼의 원료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물질명</th><th>허용기준</th></tr> </thead> <tbody> <tr> <td>비소(As)</td><td>10mg/kg 이하</td></tr> <tr> <td>크로뮴(Cr)</td><td>100mg/kg 이하</td></tr> <tr> <td>카드뮴(Cd)</td><td>2.5mg/kg 이하</td></tr> <tr> <td>인(P)</td><td>2.7% 이하</td></tr> </tbody> </table> | 물질명 | 허용기준 | 비소(As) | 10mg/kg 이하 | 크로뮴(Cr) | 100mg/kg 이하 | 카드뮴(Cd) | 2.5mg/kg 이하 | 인(P) | 2.7% 이하 |
| 물질명 | 허용기준 | | | | | | | | | | |
| 비소(As) | 10mg/kg 이하 | | | | | | | | | | |
| 크로뮴(Cr) | 100mg/kg 이하 | | | | | | | | | | |
| 카드뮴(Cd) | 2.5mg/kg 이하 | | | | | | | | | | |
| 인(P) | 2.7% 이하 | | | | | | | | | | |
| 2. 인조미끼(납·철·세라믹 등 금속성·비금속성 물질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된 것) | <p>인조미끼는 다음의 특정물질 용출 허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물질명</th><th>용출 허용기준(mg/kg)</th></tr> </thead> <tbody> <tr> <td>납(Pb)</td><td>90 이하</td></tr> <tr> <td>비소(As)</td><td>25 이하</td></tr> <tr> <td>크로뮴(Cr)</td><td>60 이하</td></tr> <tr> <td>카드뮴(Cd)</td><td>75 이하</td></tr> </tbody> </table> | 물질명 | 용출 허용기준(mg/kg) | 납(Pb) | 90 이하 | 비소(As) | 25 이하 | 크로뮴(Cr) | 60 이하 | 카드뮴(Cd) | 75 이하 |
| 물질명 | 용출 허용기준(mg/kg) | | | | | | | | | | |
| 납(Pb) | 90 이하 | | | | | | | | | | |
| 비소(As) | 25 이하 | | | | | | | | | | |
| 크로뮴(Cr) | 60 이하 | | | | | | | | | | |
| 카드뮴(Cd) | 75 이하 | | | | | | | | | | |

■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5의2] <개정 2024. 11. 26.>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제21조의2 관련)

| 구분 | 지정기준 |
|------------|---|
| 1. 조직 | <p>가. 검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험·검사 등의 품질 및 안전성 검정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검정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것</p> <p>나. 해당 법인 또는 단체가 검정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검정 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p> |
| 2. 인력 | <p>검정의 실시 및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검정원 4명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검정원 중 2명 이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p> <p>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하는 인증심사원의 자격 또는 「산업표준화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p> <p>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에서 화학·환경공학·식품공학·식품가공학 등 이학·공학 등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졸업 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사람</p> <p>다. 낙시도구, 미끼 또는 그 밖의 생활용품의 검사·검정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p> |
| 3. 시설 및 장비 | <p>검정하려고 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및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특정물질의 함량과 용출 정도를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다만, 대학 및 연구소 등 공인된 실험·연구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분석업무를 위탁수행하는 경우에는 실험 시설 및 장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p> |

비고

제3호에 따른 실험 시설 및 장비의 규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정하여 고시한다.

■ 남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4. 1. 1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채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2]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없으며,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2호 개별기준의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모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위반행위자가 최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사실 또는 사업 여건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사실 등을 증명하는 경우. 다만, 제2호 개별기준의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모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인 경우
- 4)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를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55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 | |
|------|--------|--------------------|----|----|
| | | 1차 | 2차 | 3차 |
| 법제처 | 33 | | | |

| | | 위반 | 위반 | 이상
위반 |
|---|---------------|-----|-----|----------|
|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낙시통제구역에서 낙시를 한 경우 | 법 제55조 제1항제1호 | 20 | 40 | 80 |
| 나. 법 제7조제1호를 위반하여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 법 제55조 제1항제2호 | 50 | 50 | 50 |
| 다. 법 제7조제2호를 위반하여 낙시도구나 미끼를 낙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버린 경우 | 법 제55조 제1항제3호 | 50 | 50 | 50 |
| 라. 법 제7조제3호에 따른 낙시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잡은 경우 | 법 제55조 제1항제4호 | 80 | 80 | 80 |
| 마. 법 제7조의2를 위반하여 낙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 법 제55조 제1항제5호 | 75 | 150 | 300 |
| 바. 법 제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유해 낙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 법 제55조 제1항제6호 | 75 | 150 | 300 |
| 사.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낙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거부·기피한 경우 | 법 제55조 제2항제1호 | 100 | 100 | 100 |
| 아. 법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낙시터업자와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55조 제1항제7호 | 75 | 150 | 300 |
| 자. 법 제20조의2제3호에 따른 명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55조 제1항제8호 | 75 | 150 | 300 |
| 차.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낙시터업의 승계 사실을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5조 제1항제9호 | | | |

| | | | | |
|---|---------------------|----------------|-----|-----|
| 1) 1개월 미만 늦게 신고한 경우 | | 10 | | |
| 2)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늦게 신고한 경우 | | 20 | | |
| 3) 6개월 이상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 | 40 | | |
| 카. 법 제24조에 따른 남시터업의 휴업
・폐업・재개 또는 휴업기간 연장
신고를 정해진 기한까지 하지 않은
경우
1) 1개월 미만 늦게 신고한 경우
2)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늦게 신고한 경우
3) 6개월 이상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5조
제2항제2호 | 10
20
40 | | |
| 타.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남시
어선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남
시어선업을 한 경우
1) 1개월 미만 늦게 신고한 경우
2)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늦게 신고한 경우
3) 6개월 이상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5조
제2항제3호 | 10
20
40 | | |
| 파.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남시어
선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55조
제1항제10호 | 100 | 200 | 300 |
| 하. 법 제28조의2를 위반한 경우 | 법 제55조
제2항제3호의2 | 100 | 100 | 100 |
| 거. 법 제29조제2항·제3항에 따른 남
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55조
제1항제11호 | 75 | 150 | 300 |
| 너.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남시어선업
자 등의 출항 전 안내 의무를 위반
한 경우 | 법 제55조
제1항제11호의2 | 100 | 200 | 300 |
| 더. 법 제29조의2를 위반한 경우 | 법 제55조 | 25 | 50 | 100 |

| | 제2항제3호의3 | | | |
|--|-----------------------|-----|-----|-----|
| <p>러.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조종·승선제한 등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p> <p>1) 승선제한조치를 위반하여 남시어선에 승선하거나 조종제한조치를 위반하여 남시어선을 조종한 경우</p> <p>2) 승선제한조치를 위반하여 남시어선에 승선한 후 남시어선을 조종한 경우</p> | <p>법 제55조 제1항제12호</p> | 30 | 60 | 120 |
| <p>머.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남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을 남시어선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p> | <p>법 제55조 제2항제4호</p> | 5 | 10 | 20 |
| <p>버. 법 제33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승객으로 하여금 승선자명부를 작성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p> | <p>법 제55조 제1항제13호</p> | 50 | 100 | 200 |
| <p>서. 법 제33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승선자명부 기재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p> | <p>법 제55조 제1항제14호</p> | 50 | 100 | 200 |
| <p>어. 법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선을 거부하지 않은 경우</p> | <p>법 제55조 제1항제15호</p> | 50 | 100 | 200 |
| <p>저. 법 제33조제5항을 위반하여 승선자명부의 사본을 갖춰 두지 않은 경우</p> | <p>법 제55조 제1항제16호</p> | 25 | 50 | 100 |
| <p>처.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명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p> | <p>법 제55조 제1항제17호</p> | 75 | 150 | 300 |
| <p>커.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남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p> | <p>법 제55조 제2항제6호</p> | 100 | 100 | 100 |
| <p>터.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고발생 보고를 하지 않거나 사고 수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p> | <p>법 제55조 제1항제18호</p> | | | |

| | | | | |
|--|----------------|----------------|------------|--------------|
| 1) 사고발생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사고 수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100
200 | 200
300 | ~ 300
300 |
| 퍼. 법 제39조에 따른 납시어선업의 폐업신고를 정해진 기한까지 하지 않은 경우
1) 1개월 미만 늦게 신고한 경우
2)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늦게 신고한 경우
3) 6개월 이상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5조 제2항제7호 | 10
20
40 | | |
| 허. 법 제41조를 위반하여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끼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저장·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 법 제55조 제1항제19호 | 75 | 150 | 300 |
| 고. 법 제42조에 따른 압류·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끼에 대한 회수·폐기 또는 안전상의 위해제거 조치 명령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 법 제55조 제1항제20호 | 300 | 300 | 300 |
| 노.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1개월 미만 늦게 신고한 경우
2)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늦게 신고한 경우
3) 6개월 이상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5조 제2항제8호 | 10
20
40 | | |
| 도.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납시터업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5조 제1항제21호 | 50 | 75 | 100 |
| 로. 법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납시어선업을 한 경우 | 법 제55조 제1항제22호 | 50 | 75 | 100 |

| | | | | |
|--|----------------|-----|-----|-----|
| 모. 법 제47조제6항을 위반하여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선원을 근무하게 한 경우 | 법 제55조 제1항제23호 | 50 | 75 | 100 |
| 보.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 법 제55조 제1항제24호 | 300 | 300 | 300 |
| 소.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55조 제1항제25호 | 300 | 300 | 300 |

3. 개별기준의 적용

가. 제2호가목의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같은 남시통제 구역에서 반복하여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만 적용한다.

나. 제2호차목부터 타목까지, 피목 및 노목의 경우 다음의 사유가 있는 기간은 지연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 2) 소송 등으로 인하여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남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 2023. 8. 8.] [해양수산부령 제618호, 2023. 8. 8.,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051 - 773 - 5539, 553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시 관리 및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시통제구역 안내판) ① 「남시 관리 및 육성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남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남시통제구역 안내판의 설치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시인이 잘 읽을 수 있도록 곡선구간이나 가로수 인근 등을 피하여 시야를 가리지 아니하는 곳일 것
2. 남시인과 그 밖의 통행자의 이동에 장애가 되거나 위험이 따르지 아니하는 곳일 것
3. 같은 장소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2개 이상의 안내판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다른 안내판 등으로부터 적절한 거리를 둘 것
4. 남시통제구역의 면적이 넓거나 2개 이상의 출입로를 통하여 출입할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장소에 안내판을 설치할 것

제3조(유해 남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의 예외)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해 남시도구를 학술연구나 관람 또는 전시를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 또는 사용하는 경우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과 그 부설연구시설
나. 국공립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바.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해 남시도구를 수출하거나 수출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 또는 진열하는 경우

제4조(남시터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면 등에서 남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남시터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면 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9. 6. 25., 2020. 2. 21.>

1. 수면의 위치도 및 시설물 배치도
 2. 남시터의 최대수용인원 산정(算定) 명세서
 3. 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4. 「남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과 장비의 명세서
 5. 제4호의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6.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과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 사본(영 별표 2 제3호다목에 따른 남시터 관리선을 두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②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남시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남시터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남시터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9. 6. 25.>

1. 남시터업 허가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영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남시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남시터업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유효기간 만료에 대한 사전통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남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남시터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남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
 2. 남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절차 및 방법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제6조(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남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남시터업 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남시터업 허가증과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남시터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납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납시터업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4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납시터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납시터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제 신청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
2. 면제 신청 대상 시설 및 장비 현황
3. 면제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납시터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면제하는 부분을,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함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9조 삭제 <2016. 11. 28.>

제10조(납시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①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 제3조제5호의 수면에 서 납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납시터업 등록 신청서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납시터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납시터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납시터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4., 2019. 6. 25.>

1. 납시터업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영 제1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납시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납시터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납시터업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납시터업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납시터업 등록증과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납시터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납시터업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납시터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유효기간 만료에 대한 사전통지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12조(남시터업자 등의 준수사항)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1. 수산생물의 서식지·산란지의 파괴·훼손 금지
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이나 화학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
3. 그 밖에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나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제13조(남시터업의 승계)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종전의 남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남시터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남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2.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위승계 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남시터업 허가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남시터업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남시터업의 영업을 양도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폐업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신설 2019. 3. 13.>

제14조(남시감독공무원의 증표) 법 제23조제6항, 제30조제3항, 제42조제2항 및 제50조제4항에 따른 남시감독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① 법 제24조에 따라 휴업·폐업 등의 신고를 하려는 남시터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남시터업 폐업·휴업·영업재개·휴업기간연장 신고서에 남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남시터업을 허가 또는 등록의 유효기간 내에 폐업하거나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해당 남시터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3개월을 초과하여 남시터업을 휴업하려는 남시터업자로부터 남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남시터업자가 영업재개를 신고하면 즉시 그 남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남시터업 폐업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신설 2016. 11. 28., 2019. 3. 13.>

④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납시터업 폐업 신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시터업 폐업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6. 11. 28.>

제16조(납시어선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납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납시어선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납시어선의 선적항(船籍港)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9. 6. 25., 2020. 2. 21., 2023. 8. 8.>

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영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납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5.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
 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가 아닌 서류로 선장의 승무경력이나 선박 출입항 기록을 증명하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7.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한다)
- ②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납시어선업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납시어선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납시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시어선업을 신고한 자가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같은 시·군·구 내에서 전입신고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주소변경에 대한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9. 3. 13.>

1. 납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납시어선업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납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납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시기 등)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납시어선 안전성 검사(이하 “납시어선 안전성 검사”라 한다)는 납시어선업의 신고를 하기 전 또는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납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이하 “검사기간”이라 한다)에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시어선 안전성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납시어선 안전성 검사신청서에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

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검사기관의 장은 낙시어선 안전성 검사에 관한 수수료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21.]

제16조의3(낙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기준과 준비사항) ① 낙시어선 안전성 검사는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설비기준 및 「어선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중간검사 대상 설비의 설비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낙시어선 안전성 검사를 위한 낙시어선업자의 준비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0. 2. 21.]

제16조의4(낙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의 발급 및 유효기간) ①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낙시어선 안전성 검사신청서를 제출받은 검사기관의 장은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낙시어선에 대해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낙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이하 “검사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증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낙시어선 안전성 검사를 받은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검사기간의 말일까지 「어선법」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검사증서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최초로 낙시어선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검사증서의 발급일
2. 검사기간 중에 검사를 받은 경우: 종전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3. 검사기간이 경과한 후에 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검사증서의 발급일

[본조신설 2020. 2. 21.]

제17조(신고사항 등의 보고)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과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4., 2020. 2. 21.>

1. 낙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재발급 현황
2. 낙시어선업의 신고 및 운영 현황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의 보고시기·보고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4.>

제18조(공동영업구역의 지정 요청)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시·도지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1. 공동영업구역 지정 요청 사유서
2.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이 조에서 “지정요청구역”이라 한다)을 관할 하는 시·도지사 간의 협의 결과에 관한 서류
3. 지정요청구역의 위치와 구역에 관한 도면
4. 지정요청구역의 낙시어선업 실태조사서

제18조의2(낙시어선 안전요원의 승선 기준 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낙시어선에 승객을 태워 낙시터까지 안내만 하는 경우와 육지 또는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의 해안선으로부터 2해리 안쪽의 해역에서 낙시어선업의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사이에 낙시어선업의 영업을 하는 경우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출항 신고 시 13명 이상이 승선하고 있는 경우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낙시어선 안전요원(이하 “낙시어선 안전요원”이라 한다)은 선장이 아닌 선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23. 7. 6.>

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기초안전교육 중 어느 하나의 교육 및 같은 표에 따른 여객선교육 중 어느 하나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 ③ 낙시어선 안전요원은 낙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의 안전 확보, 수산자원 보호 및 해양환경오염 방지를 그 임무로 한다.

[본조신설 2020. 2. 21.]

제19조(낙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의 게시) 법 제32조에 따른 낙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및 낙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의 게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20조(출입항 신고) ①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항 또는 입항의 신고를 하려는 낙시어선업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출입항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승선자명부(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출항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첨부하여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9조에 따른 선박 출항·입항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8.>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출항 신고를 하려는 낙시어선업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승선하는 승객으로 하여금 별지 제16호서식의 승선자명부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6. 11. 28.>

[전문개정 2016. 7. 29.]

제21조(폐업신고) ①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낙시어선업을 폐업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낙시어선업 폐업신고서에 낙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해당 낙시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8.>

1. 낙시어선을 매도하거나 임대한 경우: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일
2. 낙시어선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여 그 소재(所在)를 6개월 이상 알 수 없는 경우: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
3. 낙시어선이 침몰한 경우: 침몰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낙시어선업 폐업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1. 28., 2019. 3. 13.>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낙시어선업 폐업 신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낙시어선업 폐업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11. 28.>

제22조(압류 또는 폐기 등의 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미끼를 압류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압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명령권자”라 한다)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미끼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미끼를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해당 미끼의 안전상의 위해가 제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폐기등 조치”라 한다)를 할 것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이행기간은 1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호에 따른 미끼의 종류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4.>

1. 폐기등 조치 대상 미끼의 종류 및 수량
2. 폐기등 조치의 이행기간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제조업자등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행계획서를 명령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 미끼의 회수 및 폐기 등 처리방법
2. 그 밖에 폐기등 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④ 제조업자등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기간에 폐기등 조치의 이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명령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 미끼의 회수 및 폐기 등 처리실적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 ⑤ 제조업자등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기간에 폐기등 조치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명령권자에게 그 이행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명령권자는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

제22조의2(낙시진흥기본계획 등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제7항에 따라 낙시진흥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거나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25.]

제23조(우수낙시터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우수낙시터로 지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1. 우수낙시터 지정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해당 낙시터업자가 법령(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그 밖에 해당 낙시터의 시설·장비 및 수질 현황 등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우수낙시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우수낙시터 지정 신청서에 해당 낙시터가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4.>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낙시터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우수낙시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4.>

제23조의2(검정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정 관련 실험 시설의 배치도
2. 검정 관련 실험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및 목록
3. 검정 인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검정 업무에 관한 규정
- ② 제1항제4호의 검정 업무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정 성분별 검정기간
2. 검정 절차 및 검정 방법에 관한 사항
3. 검정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검정 결과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5. 검정 인력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6. 그 밖에 검정 업무에 필요한 사항

③ 국립수산물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영 제21조의2 및 별표 5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수산물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11. 28.]

제23조의3(검정기관의 중요사항 변경신고의 절차) ① 검정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검정기관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검정기관 지정서 원본

② 국립수산물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변경내용을 검토하여 영 제21조의2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검정기관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서를 종전과 동일한 지정번호로 발급하고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21.]

[종전 제23조의3은 제23조의4로 이동 <2020. 2. 21.>]

제23조의4(검정 방법)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검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2. 21., 2021. 6. 30.>

1. 낚싯봉, 낚싯바늘, 낚시찌, 낚시줄 또는 인조미끼(납, 철, 세라믹 등 금속성, 비금속성 물질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된 미끼를 말한다)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제품시험의 안전기준 중 물놀이기구에 대한 중금속 용출 시험 방법

2. 가공미끼[어분(생선가루), 감자전분 등 동물성, 식물성 물질을 주 원료로 하여 열처리, 혼합 등의 제조과정을 거쳐 생산된 미끼를 말한다]의 경우: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검정 방법

[본조신설 2016. 11. 28.]

[제23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3조의4는 제23조의5로 이동 <2020. 2. 21.>]

제23조의5(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및 검정 업무의 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국립수산물과학원장은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검정 업무의 정지를 명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1. 28.]

[제23조의4에서 이동 <2020. 2. 21.>]

제24조(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① 법 제46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이하 이 조에서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 3. 24.>

1. 남시 관련 단체나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또는 회원으로서 해당 단체나 비영리법인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남시터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건전한 남시문화의 조성에 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사람
3. 남시터의 안전관리, 수산자원의 보호, 그 밖의 남시 관련 사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명예감시원은 제3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할 때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명예감시원은 남시터의 안전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 및 건전한 남시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3. 3. 24.>

1. 남시터 시설·장비의 안전성과 수질·수생태계 보존상태 등에 대한 점검 및 지도
2. 남시터에서의 수질오염행위, 사행행위 및 불법영업행위 등에 대한 감시 및 신고
3. 수산자원 보호 관련 여론 수렴 및 건의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여하는 임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명예감시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4.>

제25조(전문교육의 내용 등) ①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이하 이 조에서 “전문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2. 21.>

1. 남시인의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2. 남시터 시설·장비의 안전에 관한 사항
3. 남시터의 수질 및 위생안전 관리와 수산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4. 남시 관련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남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7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미리 전문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0. 2. 21.>

1. 천재지변, 질병·사고 등의 사유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전문교육 과정이 개설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미리 전문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해당 남시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전문교육에 필요한 경비(교재비, 수강료,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한다)는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교육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2020. 2. 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시간, 교재 편찬, 교육 결과 보고, 이수증 발급 등 전문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4., 2020. 2. 21.>

제26조(수수료) ① 법 제4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조례(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말한다)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1.>

② 법 제49조제5호에 따른 수수료는 10만원으로 한다.

제27조(출입·검사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낙시 관련 사업의 지도, 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50조제1항 각 호의 장소에 출입하여 시설, 장부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장소에 대한 출입, 검사는 매년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낙시터업자 또는 낙시어선업자가 제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낙시터 또는 낙시어선에 대한 출입, 검사는 행정처분을 받은 날(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의 시정 결과를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①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나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23. 8. 8.>

②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박출항, 입항신고사실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 8. 8.>

제29조 삭제 <2020. 4. 6.>

부칙 <제309호, 2012. 10.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는 2013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남시어선업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수산물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제23호 중 “「남시어선업법」”을 “「남시 관리 및 육성법」”으로 한다.

②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나목 중 “「남시어선업법」”을 “「남시 관리 및 육성법」”으로 한다.

④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항 중 “「남시어선업법」”을 “「남시 관리 및 육성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남시어선업법 시행규칙」,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남시어선업법 시행규칙」,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호, 2013. 3. 24.> (해양수산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남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바목,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10조제2항제3호, 제12조제3호, 제16조제1항제4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 전단, 제28조, 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별지 제2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별지 제4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11호서식 신고인 제출서류란, 별지 제19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중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물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물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물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중 “농림수산물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물부”로 한다.

⑦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27호, 2014. 12. 31.> (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호, 2016. 7. 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2 제2호다목5)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종전의 별표 2 제2호다목5)에 따라 2회 이상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별표 2 제2호다목5)의 개정규정에 따른 1회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6호, 2016. 11.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 별표 4, 별지 제20호의2서식 및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호, 2017. 1. 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32호, 2019. 3.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호, 2019. 6. 25.>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9호,2020. 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해서는 별표 2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2 제2호다목7)부터 9)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종전의 별표 2 제2호다목5)부터 7)까지에 따라 2회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별표 2 제2호다목7)부터 9)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1회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남시어선의 안전성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남시어선업을 신고하여 남시어선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남시어선의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402호,2020. 4. 6.>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6호,2021. 6. 3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1호,2023. 2. 3.>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남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5)라)의 위반행위란 중 “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어업 ”을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업 ”으로 한다.

③부터1*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613호,2023. 7. 6.>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1호 중 “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3항 ”을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8조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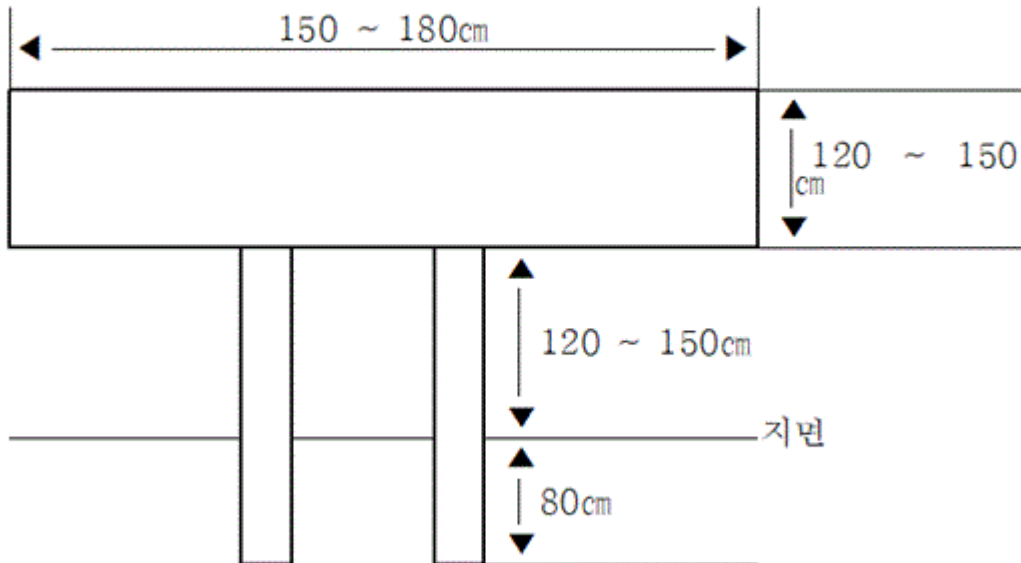
부칙 <제618호,2023. 8.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남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1]

남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 (제2조제1항 관련)

1. 안내판의 규격



- 두께 및 재질: 3mm 이상의 철판
- 바탕색: 파란색
- 글씨: 흰색

2. 안내판의 내용

알 린

1. 이 지역은 「남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남시통제구역입니다.
2. 남시통제구역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남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 래

- 가. 통제 내용: 남시 금지
- 나. 통제 사유:
- 다. 통제 구역 및 면적:
- 라. 통제 기간:

년 월 일

○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3. 2. 3.>

행정처분기준(제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1) 낙시터업자의 경우: 6개월

2) 낙시어선업자의 경우: 3개월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생계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낙시터업 허가를 받은 자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낙시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낙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경우 | 법 제14조 제1항제1호 | 허가취소 | | |
| 2)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14조 제1항제2호 | 허가취소 | | |
| 3)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 | 법 제14조 제1항제3호 | 경고 | 허가취소 | |

| | | | | |
|--|---------------|-------------|-------------|-------------|
| 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을 한 경우 | | | | |
| 4)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남시터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남시터업을 한 경우 | 법 제14조 제1항제4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5) 법 제11조에 따른 남시터업의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14조 제1항제5호 | | | |
| 가) 남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남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나) 법 제48조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다)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수산물의 안전성보장 및 건전한 남시문화 조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한 경우 |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
취소 |
| 라)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업 구역의 일정부분을 이용하는 남시터에서 면허를 받지 않은 양식 어종을 남시 대상으로 하는 경우 |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6) 남시터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 법 제14조 제1항제6호 | 허가취소 | | |

나. 남시터업을 등록한 자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남시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남시터업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경우 | 법 제19조 제1항제1호 | 등록취소 | | |
| 2)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19조 제1항제2호 | 등록취소 | | |
| 3)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남시터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남시터업을 한 경우 | 법 제19조 제1항제3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4) 법 제17조의 남시터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19조제1항제4호 | | | |
| 남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남시터의 | 23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 | | | |
|--|--|-------------|-------------|-------------|
|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 1개월 | 3개월 | 6개월 |
| 나) 법 제48조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다)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수산물 안전성보장 및 건전한 남시문화 조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한 경우 |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다. 남시어선업자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
|--|---------------|-------------|-------------|-------------|----------|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위반 | 4회 이상 위반 |
| 1)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남시어선업의 신고를 하지 않고 남시어선업을 한 경우 | 법 제38조 제1항제1호 | 영업폐쇄 | | |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남시어선업을 신고한 경우 | 법 제38조 제1항제2호 | 영업폐쇄 | | | |
| 3) 「어선법」에 따라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 법 제38조 제1항제3호 | 영업폐쇄 | | | |
| 4)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38조 제1항제4호 | 영업폐쇄 | | | |
| 5) 남시어선업자,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법 제38조 제1항제5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폐쇄 |
| 6) 법 제25조에 따른 남시어선업의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38조 제1항제6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폐쇄 | |
| 7) 법 제27조에 따른 남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8조 제1항제7호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폐쇄 | | |
| 8) 남시승객을 승선시킨 상태에서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남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시어선 | 법 제38조 제1항제8호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폐쇄 | | |

| | | | | | |
|---|----------------|----------|----------|------|--|
| 을 조종한 경우 | | | | | |
| 9) 낙시승객을 승선시킨 상태에서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낙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낙시어선을 조종한 경우 | 법 제38조 제1항제9호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폐쇄 | | |
| 10) 법 제48조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8조 제1항제10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폐쇄 | |

비 고

위 표 5)에서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행정처분의 차수를 1회 가산하여 적용한다.

■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개정 2021. 6. 30.>

낙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준비사항(제16조의3제2항 관련)

1. 선체에 관한 준비

- 가. 선체 내부에 있는 화물 및 고정밸러스트를 떼어낼 것
- 나. 선체 내부에 고정되지 않는 물품을 정리할 것
- 다. 선체 내·외부의 적당한 장소에 안전한 발판을 설치할 것
- 라. 수밀문(水密門: 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문)·방화문 등 폐쇄장치 설비의 성능을 검사하기 위한 준비를 할 것

2. 기관에 관한 준비

- 가. 연료유, 윤활유, 냉각수의 누유 또는 누수 상태를 점검할 것
- 나. 과급기(過給機)의 작동상태를 점검할 것(과급기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다. 배기관 등 고온부의 방열조치에 대해 점검할 것
- 라. 비품은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3. 구멍·소방설비에 관한 준비

- 가. 떼어내어 검사해야 하는 것은 떼어내어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 나. 재료시험 및 압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처음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다. 해당 설비의 성능을 검사하기 위한 준비를 할 것
- 라. 구멍뗂목의 경우, 정비일자 및 이탈 장치의 유효기간 등을 확인할 것

4. 배수설비에 관한 준비

- 해당 설비의 성능을 검사하기 위한 준비를 할 것

5. 전기설비에 관한 준비

- 절연저항시험 및 해당 설비의 성능을 검사하기 위한 준비를 할 것

6. 항해 및 무선설비에 관한 준비

- 가. 떼어내어 검사해야 하는 것은 떼어내어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 나. 해당 설비의 성능을 검사하기 위한 준비를 할 것
- 다. 유효한 무선국허가증 및 무선국검사증명서를 갖추고 있을 것

7. 그 밖의 설비에 관한 준비

- 해당 설비의 성능을 검사하기 위한 준비를 할 것

■ 남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3]

남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및 남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의 게시방법
(제19조 관련)

1. 게시판의 제작기준

가. 재질: 아크릴 등 색이 변하지 않는 재질

나. 색상

1) 글씨: 검은색

2) 바탕: 남시어선업 신고확인증 - 흰색
승객 준수사항 - 노란색다. 게시판 및 글씨의 크기: 게시판의 부착장소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조정하
되, 누구나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래 (게시방법의 예시)와 같
이 직사각형 형태로 제작

2. 게시판의 부착장소

해당 남시어선의 갑판실 외벽 등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

(게시방법의 예시)

남시어선업 신고확인증

승객 준수사항

※ 「남시 관리 및 육성법」 제
35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구청장이 고시한 남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표기함.

1.

2.

.

.

■ 납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0. 2. 21.>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및 검정 업무의 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제23조의5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법 제45조의3 제1항제1호 | 지정 취소 | | |
|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정 업무를 한 경우 | 법 제45조의3 제1항제2호 | 지정 취소 | | |
| 다. 검정 결과를 거짓으로 내준 경우 | 법 제45조의3 제1항제3호 | 업무 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
| 라.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45조의3 제1항제4호 |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6. 25.>

낙시터업 [] 허가 [] 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5일 | |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 |
| | 주소
(전화번호:) | | | | | |
| 낙시터 | 위치 및 구역 | 도 | 군 | 면 | 리 | 지선 |
| | 명칭과 전체면적(수면적) | 낙시터 | | 전체면적(수면적) | | |
| | 자원조성실적 | 실적 | | 잠재자원량 | | |
| | 부대시설 | | | | | |
| |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기간 | . . . 부터 . . . 까지 (. . . 년간) | | | | |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낙시터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 | |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수면의 위치도 및 시설물 배치도
2. 낙시터의 최대수용인원 산정 명세서
3.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4.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과 장비의 명세서
5. 제4호의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과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 사본(「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다목에 따른 낙시터 관리선을 두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처리절차

| |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확인 | → | 기안·결재 | → | 허가증 또는 등록증 작성 | → | 발급 |
| 신청인 | | 처 리 기 관
(시·군·구) | | 처 리 기 관
(시·군·구) | | 처 리 기 관
(시·군·구) | | 처 리 기 관
(시·군·구) | | 신청인 |

210mm×297mm[백상지 80g/㎡]

■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6. 25.>

낙시터업 변경 [] 허가 [] 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남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5일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낙시터 | 허가 또는 등록 번호 | 년도 낙시터업 허가(등록) 제 호 | |
| | 변경하려는 사항 | 허가(등록)사항 | 변경사항 |
| | | 가.
나.
다. | 가.
나.
다. |
| | 변경 사유 | 가.
나.
다. | |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제1항 후단 및 제16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낙시터업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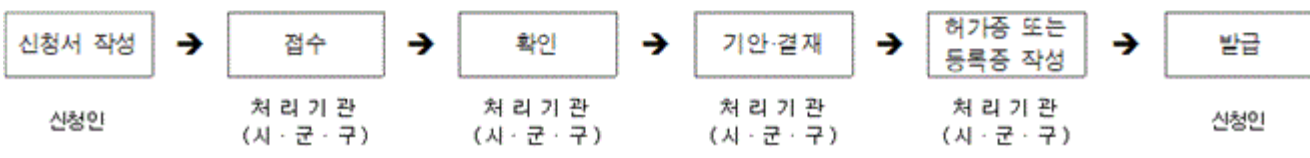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낙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 | | |
|--|------------------|-------------------------|------------------|--|
| 제 호 | | | | |
| 낙시터업 허가증 | | | | |
| 신청인 | 성 명
(법인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낙시터 | 허가번호 | 년도 낙시터업 허가 제 호 | | |
| | 위치와 구역 | 도 군 면 리 | | |
| | 명칭과
전체면적(수면적) | 낙시터 전체면적(수면적) | | |
| | 부대시설 | | | |
| | 유효기간 | . . . 부터 . . . 까지 (년간) | | |
| <p>「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낙시터업을 허가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p> <div style="border: 2px solid orange; width: 100px; height: 80px; margin: 0 auto; text-align: center; line-height: 80px;">직인</div> | | | | |

210mm×297mm[백상지 120g/m²]

낙시터업 [] 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등록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5일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전화번호:) | | | |
| 낙시터 | 허가 또는 등록 번호 | 년도 낙시터업 허가(등록) 제 호 | | |
| | 유효기간 | . . , 부터 . . , 까지 (년간) | | |
| | 연장기간 | . . , 부터 . . , 까지 (년간) | | |
| | 연장 신청 횟수
(허가의 경우만 적습니다) | [] 1회 [] 2회 | | |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12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낙시터업 허가 또는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2001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신청인 제출서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2. 수면의 위치도 및 시설을 배치도 3.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 산정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과 장비의 명세서 6. 제5호의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7.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과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 사본(「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다목에 따른 낚시터 관리선을 두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기안·결재 → 허가증 또는 등록증 작성 →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

■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낙시터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14일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전화번호:) | | |
| 낙시터 | 허가번호 | 년도 | 낙시터업 허가 제 호 |
| | 위치와 구역 | 도 | 군 면 리 |
| | 명칭과
전체면적(수면적) | 낙시터 | 전체면적(수면적) |
| | 신청 사유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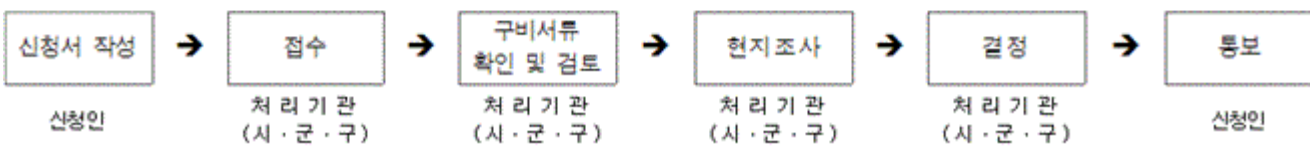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낙시터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면제 신청 구역을 표시한 축적 2만 5천분 1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
2. 면제 신청 대상 시설 및 장비 현황
3. 면제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16. 11. 28.>

■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 | | | |
|--|------------------|-------------------------|------------------|--|
| 제 호 | | | | |
| 낙시터업 등록증 | | | | |
| 신청인 | 성 명
(법인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낙시터 | 등록번호 | 년 도 낙시터업 등록 제 호 | | |
| | 위치와 구역 | 도 군 면 리 | | |
| | 명칭과
전체면적(수면적) | 낙시터 전체면적(수면적) | | |
| | 부대시설 | | | |
| | 유효기간 | . . . 부터 . . . 까지 (년간) | | |
| <p>「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낙시터업을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p> <div style="border: 2px solid orange; width: 100px; height: 80px; margin: 10px auto; text-align: center; color: orange; line-height: 80px;">직인</div> | | | | |

■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 2. 21.>

지위승계 신고서

※ []에는 V 표시를 하고, 뒤쪽의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확인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3일 |
|------|-----|-----|---------|

| | | |
|----------------|---------|----------------|
| 승계하는
사람(법인)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
| 승계받는
사람(법인)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
| 낙시터 | 명칭(상호) |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허가(등록)
번호 | 년도 낙시터업 허가(등록) 제 호 |
| | 지위승계
사유 | [] 양도·양수 [] 상속 [] 합병 [] 그 밖의 사유() |

허가증 또는 등록증 분실사유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낙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작성하고,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제처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뒤쪽)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14조 또는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현재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 행정처분일 | 행정처분 내용 | 행정처분 사유 |
|-------|---------|---------|
| | | |

나. 행정처분 절차 진행 사항

| 적발일 | 위반 내용 | 진행 중인 내용 |
|-----|-------|----------|
| | | |

-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행정처분일 란에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 2)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 위 기재사항을 보완하도록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14조 또는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 양도인의 서명은 양도인이 직접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3.3.24>

낙시감독공무원의 증표

(앞쪽)

| |
|--|
| 제 호 |
| 낙시감독공무원증 |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사 진</p> <p>3cm × 4cm</p> <p>(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p> </div> |
| <p>홍길동(한자)</p> <p>HONG, G. D.</p> <p>해양수산부</p> <p>시·도</p> <p>시·군·구</p> |

55mm × 85mm [보존용지(1종) 120g/m²]

(색상: 연하늘색)

(뒤쪽)

| | |
|--|-----------------|
| 낙시감독공무원증 | |
| 번 호: | |
| 소 속: | |
| 직 명: | |
| 성 명: | |
| 생년월일: | |
| 유효기간: | . . .부터 . . .까지 |
| <p>위 사람은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23조제6항, 제30조제3항, 제42조제2항, 제50조제4항에 따른 낙시감독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 |
| <p>해양수산부장관</p> <p>시·도지사</p> <p>시장·군수·구청장</p> | 직인 |
| <p>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p> <p>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p> | |

■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0. 2. 21.>

☐ 폐업
☐ 휴업
☐ 영업재개
☐ 휴업기간연장

낙시터업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즉시 |
|----------|---------------------|-----|--------------|
| 신고인 | 성명(법인명)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 낙시터명 | | |
| | 허가(등록)번호 | | |
| 신고
내용 | 폐업 연월일 | | |
| | 휴업기간 또는
영업재개 연월일 | | |
| | 사유 | | |

허가증 또는 등록증 분실사유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낙시터업의

- ☐ 폐업
☐ 휴업
☐ 영업재개
☐ 휴업기간연장
- 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신고인 제출서류 | 낙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낙시터업을 허가 또는 등록의 유효기간 내에 폐업하거나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수수료 없음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3. 8. 8.>

낙시어선업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알록)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2일 |
|--------------------------------|---|--------------------|-------------|----|
| 신고인 및
선원 중
해기사 면허
소지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면허의 직종 및 등급 | |
| | | | | |
| | | | | |
| | | | | |
| 어선 명세 | 어선번호 | 어선의 명칭 | | |
| | 총톤수
톤 | 어업허가번호 또는 관리선 지정번호 | | |
| | 선적항 | 최대승선 승객 수 | 명 | |
| | | 최대승선 선원 수 | 명 | |
| 주 영업장소 | | | | |
| 영업시간 | ☐ 주간(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기타(시 ~ 시) | | | |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낙시어선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낙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5.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
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가 아닌 서류로 선장의 승무경력이나 선박 출입항 기록을 증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7.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합니다) |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신고인이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취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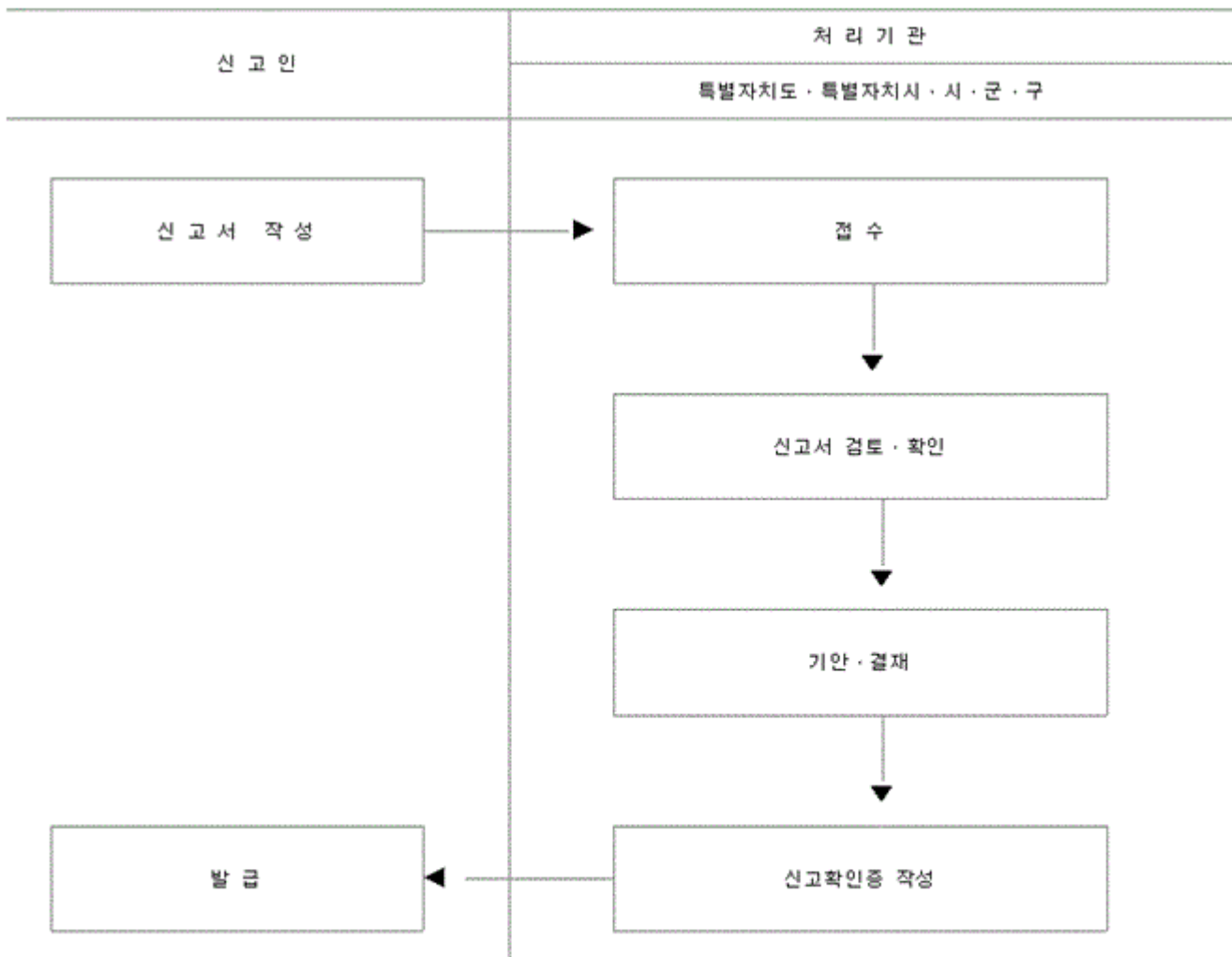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선적항은 선적증서에 적힌 어선등록 항·포구명을 적습니다.
- 최대승선 승객 수 및 선원 수는 어선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 범위에서 보합 또는 공제에 가입한 낙시어선에 최대 승선할 수 있는 승객 수 및 선원 수(낙시어선업자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 주 영업장소는 낙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키거나 하선시키는 낙시어선의 영업근거지로서 해당 낙시어선업을 신고하려는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의 항·포구 중 출입항신고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항·포구명을 적습니다.

업무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3. 8. 8.>

낙시어선업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 성명(법인명)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전화번호:) | | | |
| 낙시
어선업 | 신고확인증
번호 | | |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 | | | |
| | 변경사유 | | | |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낙시어선업 변경을 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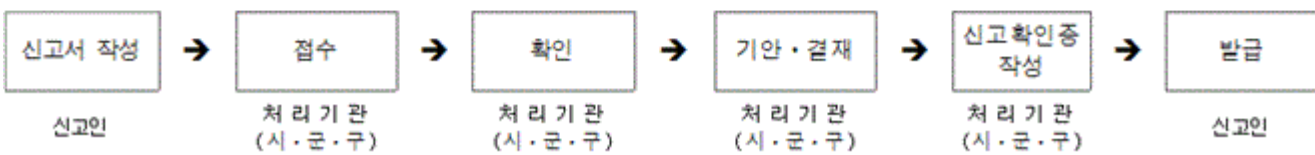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낙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9. 3. 13.>

| | | | | |
|---|-------------|------|------------------------|--------|
| 제 호 | | | | |
| 낙시어선업 신고확인증 | | | | |
| 낙시어선업자 | 성명
(법인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낙시어선업자를
포함한
선원 중 해기사
면허 소지자 | 성명 | 생년월일 | 면허의 직종 및 등급 | |
| | | | | |
| | | | | |
| 어선 명세 | 어선번호 | | 어선의 명칭 | |
| | 총톤수 | 톤 | 어업허가번호 또는
관리선 지정번호 | |
| | 선적항 | | 최대승선 승객 수
최대승선 선원 수 | 명
명 |
| 주 영업장소 | | | | |
| 영업시간 | | | | |
| 영업구역 | | | | |
| 유효기간 | | | | |
| <p>「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낙시어선업을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2px solid orange; width: 100px; height: 80px; margin-right: 10px;"></div> <div style="text-align: center;">직인</div> </div> | | | | |

210mm×297mm[백상지 120g/m²]

■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신설 2020. 2. 21.>

낙시어선 안전성 검사신청서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검사요청일부터 7일 |
| 소유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 주 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 :)(팩스번호 :) | | |
| 어선 | 어선의 명칭 | 어선번호 | |
| | 검사요청일 | 검사장소 | |
| 비고 | | | |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낙시어선 안전성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검사기관의 장 귀하

| | | | | |
|-------|---|---------------|--------|----|
| 어선 명세 | 선 적 항 | | | |
| | 선 질 []강 []목 []FRP []그 밖의 선질 () | | | |
| | 총 톤 수 | 톤 | 배의 길이 | 미터 |
| | 추진기관 | [kW] [PS] [대] | 통신기기종류 | |
| | 최대승선인원 명(어선원: 명, 낙시승객: 명) | | | |
| | 아간항행여부 []주간(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 | |
| 첨부서류 |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 | | | |

처리절차

| | | | | | | | |
|---------------|---|-------------|---|----------------|---|----|-----------------|
| 신청서 작성
신청인 | → | 접 수
검사기관 | → | 안전성 검사
검사기관 | → | 합격 | 검사증서 발급
검사기관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220g/㎡]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 <신설 2020. 2. 21.>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제 호

| | | | | | |
|------------|---------------------------|-------------------|---------|-----------|--|
| 어선의 명칭 | | | 어선번호 | | |
| 선 적 항 | | | | | |
| 선 질 | | | 총 톤 수 | 톤 | |
| 추진기관 | 기관 | [kW] | [PS] | 대 | |
| 배의 길이 | 미터 | | 통신기기 | | |
| 최대승선인원 | 명 (어선원: 명, 낚시승객: 명) | | | | |
| 설비 확인 | 구멍조끼 : 개
(어린이용 : 개 포함) | 구멍부환 : 개 | | 구멍줄 : 개 | |
| | 난간손잡이:
(핸드레일) | 구급약품세트: 개 | | 자기점화등 : 개 | |
| | 구멍땃목: 개 | 선박자동식별장치: | | 선실 비상탈출구: | |
| | 항해용 레이더: |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 | | |
| | 소화기 : 개
(간이식 개, 휴대식 개) | 전기설비: | | 화장실: | |
| | 쓰레기통: 개 | | | | |
| | | | | | |
| 항해와 관련한 조건 | | | | | |
| 유효기간 | 년 월 일부터 | | 년 월 일까지 | | |
| 차기 검사일자 | 년 월 일부터 | | 년 월 일까지 |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확인자 소속:

성명:

210mm×297mm[보존용지(1종) 220g/㎡]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동영업구역 지정 요청서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27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 요청합니다.

| | |
|----------------------------|--|
|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사유(요약) | |
|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의 위치와 면적 | 행정구역, 각 지점의 경위도 및 면적 표시
(별지 도면과 같음) |
| 다른 도와와의 관계 | |

붙임: 1. 공동영업구역 지정 요청 사유서

2.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이하 "지정요청구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간의 협의 결과에 관한 서류

3. 지정요청구역의 위치와 구역에 관한 도면

4. 지정요청구역의 낙시어선업 실태조사서,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출입항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 | | | | |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즉시 | |
| 낙시어선업 | | 신고확인증 번호 | | 어선의 명칭 | |
| 신고인 | 선주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 (전화번호:) | |
| | 선장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 (전화번호:) | |
| 어선
명세 | 등록번호 | | 톤수 | | 승선 정원 |
| | 속력 | | 통신기 | | 선적지 |
| | 어업허가번호 또는 관리선 지정번호 | | | | |

신고사항

| 출 항 | | | | | | | | 입 항 | | |
|-----|-----|------|-------|----|---------------------|----|------------------|-----|----|-----------------|
| 일시 | 출항지 | 낙시장소 | 입항 예정 | |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확인 | 출입항
신고
기관장 | 일시 | 장소 | 확인
(서명 또는 인) |
| | | | 일시 | 장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뒤쪽)

신고사항

[illegible]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입항을 신고합니다.

○○○출입항신고기관장 귀하

| | | |
|----------|-----------------------------|-----------|
| 신고인 제출서류 | 승선자명부(출항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승선자 명부

(승선일: 년 월 일)

[illegible]

※ "비고"란에는 승객과 선원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선원이 해기사 면허나 선원수첩을 소지한 경우에는 그 번호를 같이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0. 2. 21.>

낙시어선업 폐업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 성명(법인명)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전화번호:) | | | |
| 낙시
어선업 | 신고확인증
번호 | | | |
| | 폐업일 | | | |
| | 폐업 사유 | | | |

신고확인증 분실사유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낙시어선업의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신고인 제출서류 | 낙시어선업 신고확인증(신고확인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작성하고,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 | | 수수료
없음 | | | |
|----------|---|--------------------|---|--------------------|-----------|--------------------|---|-----|
| 처리절차 | | | | | | | | |
| 신고서 작성 | → | 접수 | → | 확인 | → | 기안·결재 | → | 통보 |
| 신고인 | | 처 리 기 관
(시·군·구) | | 처 리 기 관
(시·군·구) | | 처 리 기 관
(시·군·구) | | 신고인 |

■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 | | | | |
|---|-----|------------|-----|-----|-----|
| 제 호 | | 압류증 | | 국산품 | 수입품 |
| | | | | | |
| 기호 | | | | | |
| 번호 | | | | | |
| 압류품 제조업자 | 성 명 | | 상 호 | | |
| | 소재지 | | | | |
| 압류품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 등 | 성 명 | | 상 호 | | |
| | 소재지 | | | | |
| 압 류 품 명 | | | | | |
| 압 류 수 량 | | | | | |
| 압 류 사 유 | | | | | |
| 압 류 일 시 | | 시 분 | | | |
| 품목의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 | | | | |
| 압 류 장 소 | | | | | |
| <p>「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압류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압 류 자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p> | | | | | |

210mm×297mm[백상지 120g/㎡]

■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3.3.24>

우수낙시터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20일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전화번호:) | | | |
| 낙시터 | 허가(등록)번호 | 년도 | 낙시터업 허가(등록) | 제 호 |
| | 허가(등록)연월일 | | | |
| | 낙시터명 | | | |
| | 전화번호 | | | |
| | 소재지 | | | |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낙시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
|--------------|---|------|
| 신청인 제출서류 |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10만원 |

처리절차

| |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검토 | → | 심사 | → | 결재 | → | 회신 및 공고 |
| 신청인 | | 해양수산부 | | 해양수산부 | | 해양수산부 | | 해양수산부 | | 신청인 및 국민 |

■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3.3.24>

제 호

우수낙시터 지정서

1. 낙시터명: (허가·등록번호:)
2. 사업자명: (생년월일:)
3. 소재지:
4. 우수낙시터 지정 내용:

위 낙시터를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우수낙시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210mm × 297mm [백상지 120g/㎡]

■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개정 2020. 2. 21.>

검정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 | | | | |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 60일 | |
| 신청인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
| 신청
내용 | 검정기관의 명칭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소재지 | | | 전화번호 | | | |
| | 검정대상 | 낙시도구 | [] 낙신통 [] 낙신타늘 [] 낙시찌 [] 낙신히 | | | | |
| | | 낙시미끼 | [] 가공미끼 [] 인조미끼 | | | | |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낙시도구 및 미끼에 대한 검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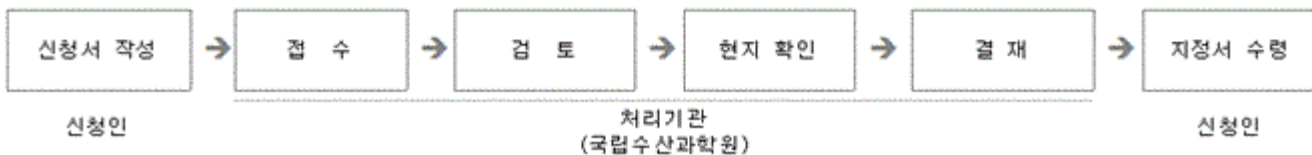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 | |
|------|--|
| 첨부서류 | 1. 검정 관련 실험 시설의 배치도
2. 검정 관련 실험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및 목록
3. 검정 인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검정 업무에 관한 규정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m²]

■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 20호의 3서식] <신설 2016. 11. 28.>

제 호

검정기관 지정서

대표자 :

생년월일 :

검정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검정대상의 범위

| | |
|------|--|
| 낙시도구 | ☐ 낙싯봉 ☐ 낙싯바늘 ☐ 낙시찌 ☐ 낙싯줄 |
| 낙시미끼 | ☐ 가공미끼 ☐ 인조미끼 |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낙시도구 및 미끼에 대한 검정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장

직인

210mm × 297mm [백상지 (150g/㎡)]

■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 20호의 4서식] <신설 2020. 2. 21.>

검정기관 변경신고서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 신고인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검정기관명 | | 지정번호 |
| 소재지 | 사무실 | 전화번호 |
| | 실험실 | 전화번호 |
| 변경신고
사항 | 변경사유 | |
| | 변경 전 | |
| | 변경 후 | |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4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의 중요사항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3.3.24>

낙시명예감시원의 증표

(앞쪽)

| |
|--|
| 제 호 |
| 낙시명예감시원증 |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사 진</p> <p>3cm × 4cm</p> <p>(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p> </div> |
| 홍길동(한자) |
| HONG, G. D. |
| 해양수산부 |

55mm × 85mm [인쇄용지(1종) 120g/㎡]

(색상: 연하늘색)

(뒤쪽)

| |
|--|
| 낙시명예감시원증 |
| 번 호:
성 명:
생년월일:
활동기간: . . .부터 . . .까지 |
| 위 사람은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46조에 따른 낙시명예감시원임을 증명합니다. |
| <div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div> |
| 1.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46조에 따라 이 증표를 소지한 사람이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관련 기관·시설 및 단체의 장 등은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수산물관련법규

1. 수산업법
2. 수산업법 시행령
3. 선박안전 조업규칙



수산업법

[시행 2026. 4. 23.] [법률 제20940호, 2025. 4. 22.,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근해어업) 051 - 773 - 5517, 5518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먼해어업, 연안어업, 신고어업) 051 - 773 - 5519, 5520
 해양수산부 (어구순환기획과 - 어구의 관리 등) 051 - 773 - 5604, 560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어업·양식업·어획물운반업·수산물가공업 및 수산물유통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양식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어획물운반업”이란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사료·비료·호료(糊料)·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어장(漁場)”이란 제7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
7. “어업권”이란 제7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8. “입어(入漁)”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9. “입어자(入漁者)”란 제48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10. “어업인”이란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를 말하며,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를 포함한다.
11.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2.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3. “어획물운반업자”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4. “어획물운반업종사자”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현장에서 양륙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5.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6. “바닷가”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17. “유어(遊漁)”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18. “어구(漁具)”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19. “부속선”이란 허가받은 어선의 어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허가받은 어선 외에 부가하여 허가받은 운반선, 가공선, 등선(燈船), 어업보조선 등을 말한다.
20. “부표”란 어업인 또는 양식업자가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장에 설치할 때 사용하는 어장부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바다
2. 바닷가
3.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제4조(어장이용개발계획 등) ①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개발하기 위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계획을 세운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세우려면 개발하려는 수면에 대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개발계획을 세우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개발계획 기본지침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개발계획세부지침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세우려는 수면이 다른 법령에 따라 어업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세우려는 경우에는 제95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개발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개발계획의 수립、승인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제95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은 제1항부

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새로운 수면의 추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다시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발계획기본지침과 개발계획세부지침의 작성, 개발계획의 수립과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1항에 따른 어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그 국민 또는 법인에 대한 투자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거나 의결권이 과반수인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 자국(自國) 내의 수산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내의 수산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대해서도 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금지나 제한을 할 수 있다.

제6조(공동신청) 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이 법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는 때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정하여 신청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대표자로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에게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를 변경한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관청이 대표자를 지정한다.

제2장 면허어업

제7조(면허어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마을어업: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連接)한 일정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定着性)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를 할 때에는 개발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종류와 마을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 어장의 수심(마을어업은 제외한다), 어장구역의 한계 및 어장 사이의 거리
 2. 어장의 시설방법 또는 포획방법·채취방법
 3. 어획물에 관한 사항
 4. 어선·어구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사항
 5. 해적생물(害敵生物) 구제도구의 종류와 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업면허에 필요한 사항

제8조(마을어업 등의 면허) ①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漁村契)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에만 면허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일정한 지역의 어업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에 마을어업 외의 어업을 면허할 수 있다.

제9조(면허의 결격사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어업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어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
2.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 면적과 신청한 어업권의 어장 면적을 합친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되는 자
3.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0조(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제11조(면허의 금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업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4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를 취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어업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면허의 제한 및 조건)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를 하는 경우로서 어업조정(漁業調整)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어업면허를 제한하거나 그 어업면허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3조(면허의 우선순위) ① 어업면허(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면허는 제외한다)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기술자(이하 “수산기술자”라 한다)로서 그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그 신청일 이전 5년 동안(「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휴식 기간은 제외한다) 그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2. 수산기술자로서 제40조제2항에 해당하는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그 신청일 이전 5년 동안(「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휴식 기간은 제외한다) 같은 항에 해당하는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그 신청 당시 또는 「어장관리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어장휴식 실시 당시 그 어업의 어장에서 그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끝난 자
2. 수산기술자로서 그 신청한 어업의 어장에서 그 신청한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그 신청일 이전 5년 동안(「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휴식 기간은 제외한다) 그 신청한 어업의 어장에서 그 신청한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소(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어업 관계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두고 있던 자
2.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시·군·자치구와 연결하는 시·군·자치구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던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④ 제8조제1항에 따른 마을어업 면허의 우선순위는 같은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서에 따른 순위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해당 어업의 어장에서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2. 해당 어업의 어장에서 어장관리 및 어업경영상태가 매우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3. 해당 어업권을 취득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한 자
4. 제8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권이 취소되어 손실보상을 받은 자. 다만, 손실 보상 당시 다른 어업권을 이미 취득하였거나 보상받은 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어업권을 이전·분할 받은 경우 각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끝나 새로 어업면허를 신청하는 때에는 우선순위에서 제외할 수 없다.

제14조(면허의 유효기간) ①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제4조 제4항 및 「어장관리법」 제8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 제13조제5항 각 호 및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어업권자의 신청에 따라 면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총 연장허가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권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어업권에 대하여 등록된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어업권의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전단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어업권은 면허의 유효기간이나 제2항의 연장허가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소멸된다.

제15조(면허제한구역 등에 대한 한정어업면허)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34조제6호(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해당되어 어업이 제한된 구역이나 어업면허가 취소된 수면에서 어업을 하려는 자에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 따로 면허기간 등을 정하여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이하 “한정어업면허”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한정어업면허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및 제88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한정어업면허를 할 때 관계 행정기관이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배제하는 조건으로 협의하거나 승인할 때에는 그 조건을 붙여 면허하여야 한다.

제16조(어업권의 취득과 성질) ① 제7조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와 제19조에 따라 어업권을 이전받거나 분할받은 자는 제17조의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

② 어업권은 물권(物權)으로 하며,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하여는 「민법」 중 질권(質權)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어촌계의 총유(總有)로 한다.

제17조(어업권의 등록) ①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보존·이전·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 지분(持分) 또는 입어에 관한 사항은 어업권원부에 등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

③ 등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어업권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어업권자는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어업권의 이전·분할 또는 변경) ① 어업권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전·분할 또는 변경할 수 없다.

1.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2. 어업권(마을어업권은 제외한다)을 등록한 후 어업을 시작한 날(시설물의 설치를 끝낸 날을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경우

3.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어업권을 이전받거나 분할받으려는 자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면 그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의 합병, 분할, 업무구역의 변경 또는 상호 합의에 따라 어촌계와 어촌계 사이, 지구별수협과 지구별수협 사이 또는 어촌계와 지구별수협 사이에 서로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을 이전하거나 분할할 수 있다.

제20조(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어업권자가 면허를 받은 사항 중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어업권자가 같은 시·군·자치구 내에서 주소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소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금지)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2조(담보로 제공할 때의 공작물) 어업권을 담보로 제공할 때 그 어장에 설치한 공작물은 어업권에 딸려 어업권과 하나가 된 것으로 본다.

제23조(공유자의 동의) ① 어업권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64조에 따른 매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 공유자의 주소나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한 때에는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마지막 날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24조(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어업권은 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없이 분할·변경 또는 포기할 수 없다.

제25조(처분한 때의 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따라 어업권자에게 생긴 권리·의무는 어업권과 같이 이전한다.

제26조(어업권의 경매) ① 제30조제2항, 제34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6호(제33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취소한 경우 그 어업권의 저당권자로 등록된 자는 제35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30일 이내에 어업권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어업권은 면허를 취소한 날부터 경매절차가 끝난 날까지 경매의 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경매에 따른 경매대금 중 경매비용과 제1항의 저당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은 국고에 귀속한다.

④ 경락인이 경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어업면허의 취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27조(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금지) ① 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선은 어업권자(제36조에 따른 어업권의 행사자를 포함한다)가 소유한 어선이나 임차한 어선으로 한정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어업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의 종류와 어장의 면적 또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어구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 면허받은 어업의 어장에 관리선을 갖추지 못한 어업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어선이나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어업의 어선을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선의 사용을 지정받은 어업권자는 그 지정받은 어장구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기 위하여 그 관리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리선에 대하여 제40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의 규모와 수, 기관의 마력(馬力) 및 그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그 밖에 관리선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리선의 정수(定數)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보호구역) ① 정치망어업의 어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둔다.

② 제1항의 보호구역에서는 해당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와 어업권의 행사에 방해가 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어망을 사용하는 어업
2. 불빛이나 음향 등을 이용하여 수산동물을 유인하거나 몰아서 하는 어업
3. 통발 또는 연승(延繩) 등의 어구를 설치하거나 끌어구류 및 잠수기를 사용하는 어업
4. 어업권의 행사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상 필요 등 공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을어업권과 바닥식양식어업권이 설정된 어장 주변에 다른 어업과의 분쟁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장과 어장 사이를 보호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보호구역에서는 어업권의 행사에 방해가 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근 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잠수기를 사용하는 어업
2. 그 밖에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어업

⑤ 제1항 및 제3항의 보호구역의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휴업 신고 및 어업권 포기의 신고) ① 어업권을 취득하여 어업을 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려면 휴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에 따라 어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휴업을 할 수 없으며,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어업을 계속하려면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에는 제33조 또는 제55조에 따른 명령에 따라 어업을 정지한 기간 및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휴식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어업권자가 어업권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어업의 개시 등) ① 어업권을 취득한 자는 그 어업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어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2년의 범위

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권을 취득한 자가 그 어업을 시작한 후 1년이 지났으나 계속하여 해당 어장을 휴업 상태로 두어 어장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어업권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의 기간에는 제33조 또는 제55조에 따른 명령에 따라 어업을 정지한 기간 및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휴식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1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①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범위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임대차의 금지)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또는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

제33조(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繫留) 또는 출항·입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1. 수산자원의 증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保衛)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4. 선박의 항행·정박·계류 또는 수저전선(水底電線)의 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배출로 인하여 배출해역 바닥에서 서식하는 수산동물의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
8. 어업권자가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그 제한·조건을 위반한 경우
9. 어업권자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어업의 제한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어업의 제한 등의 처분 기준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라 계류처분을 받은 어선의 관리는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

제34조(면허어업의 취소)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면허를 받은 경우
2. 제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어업권자가 제29조제1항·제2항 또는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4. 어업권자가 제31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
5. 어업권자가 제32조를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외에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35조(어업권의 취소 통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의 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어업권을 등록한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6조(어촌계 등의 어장관리) ①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의 계원이 행사한다. 다만, 마을어업권의 경우에는 계원이 아닌 자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을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해당 어촌계가 속해있는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2. 마을어업권의 행사에 대한 어촌계 총회의 의결이 있을 것
3. 제48조에 따른 어업의 신고를 마쳤을 것

②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장에 인접한 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그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행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권의 행사방법과 행사의 우선순위, 어촌계별·어촌계원별·조합원별 시설량 또는 구역의 조정(調整), 그 밖에 어장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어장관리규약) ① 제8조에 따라 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와 지구별수협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장에 입어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입어방법과 어업권의 행사방법, 어업의 시기, 어업의 방법, 입어료(入漁料)와 행사료(行使料), 그 밖에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이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어장관리규약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8조(어업권 행사의 제한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원이나 조합원의 소득이 균등하게 증대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의 어장에 대한 어업권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제39조(입어 등의 제한) ① 마을어업의 어업권자는 입어자에게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장에 입어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어업권자와 입어자는 협의에 따라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 및 어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업에 대하여 제한을 할 수 있다.

③ 제12조 또는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마을어업의 면허에 붙인 제한·조건 또는 정지는 입어자의 입어에 붙인 제한·조건 또는 정지로 본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권자나 입어자가 제2항의 협의 또는 제91조제2항에 따른 재결을 위반하거나 입어자가 제3항에 따른 제한·조건 또는 정지를 위반하면 그 면허한 어업을 제한·정지하거나 면허를 취소하거나 입어를 제한·정지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제3장 허가어업과 신고어업

제40조(허가어업) ①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動力漁船)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3항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구획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으로 시·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을 설정·관리하는 경우에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에 대하여 구획어업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별 어업의 종류와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그 밖에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 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톤수, 기관의 마력, 어업허가의 제한사유·유예, 양륙항(揚陸港)의 지정, 조업해역의 구분 및 허가 어선의 대체
2.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에 대한 허가의 정수(定數) 및 그 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부속선, 사용하는 어구의 종류

⑤ 행정관청은 제34조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와 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어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4조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다시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 또는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어선、어구에 대하여 다시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1조(어업허가의 우선순위) ① 제40조제4항제2호 및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1.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을 대체하기 위하여 그 어업의 폐업신고와 동시에 같은 종류의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예기간이 만료되거나 유예사유가 해소되어 같은 종류의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에 2회 이상 어업허가가 취소되었던 자는 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의 우선순위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어업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라 어업허가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어 어업허가의 건수가 허가의 정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어업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수산기술자
2.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조건불리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3. 신청한 어업을 5년 이상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4. 신청한 어업을 1년 이상 5년 미만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및 신청한 어업과 다른 종류의 어업을 5년 이상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④ 제3항 각 호의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신청자의 어업경영능력, 수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정도, 수산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 및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행정관청이 정한다.

⑤ 그 밖에 어업허가의 우선순위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혼획의 관리) ① 어업인은 제40조제4항에 따라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가 정하여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수산동물을 혼획(混獲)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혼획을 할 수 있다.

1.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
2. 혼획이 허용되는 수산동물
3. 혼획의 허용 범위

② 어업인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혼획이 허용되는 수산동물을 허용 범위를 넘어서 포획·채취하거나 포획·채취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조업을 중단하거나 조업장소를 이동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혼획저감장치를 어구에 부착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어업인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혼획으로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제5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정된 매매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낙도·벽지(僻地) 등 제5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정된 매매장소가 없는 경우

2. 혼획으로 포획·채취한 어획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획량 이하인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획물 중 혼획이 허용되는 수산동물의 확인, 혼획 허용 범위의 준수 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한시어업허가) ① 시·도지사는 그동안 출현하지 아니하였거나 현저히 적게 출현하였던 수산동물(「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대상 정착성 수산자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량 출현하고 이를 포획할 어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3항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장이 허가 건수가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산동물의 적절한 포획·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어업(이하 “한시어업”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1. 어업의 종류(이 법에서 규정한 어업의 종류에 한정한다)

2. 포획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 및 어획가능총량

3. 해역의 범위

4. 조업의 기간(연간 3개월 이내. 다만,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및 시기, 척수

5.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척당어획량 할당 및 관리

② 시·도지사는 한시어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라 어선 또는 어구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겸업(兼業)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한시어업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어업분쟁이 있거나 어업질서의 유지가 필요한 경우

2. 한시적으로 포획하려는 수산동물과 동일한 품종을 주로 포획대상으로 하는 어업의 활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에 지장이 있거나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한시어업의 승인, 허가대상 및 허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 ① 행정관청은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어업을 허가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연근해어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과 어업의 종류 및 어선의 규모별로 조업구역, 어구·어법, 어구의 규모 및 표지부착 등 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여야 한다.

② 행정관청은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의 보호, 어업조정 또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제한 또는 조건 외에 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5조(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어선등”이라 한다)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매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임차한 자(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와 제27조제3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임차하여 관리선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종전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60일로 한다) 이내에 해당 허가를 처분한 행정관청에 승계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등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승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행정관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처분 또는 부담이나 조건 등도 함께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어업허가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행정관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의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시행일: 2022. 7. 12.] 제45조제1항

제46조(시험어업 및 연구어업·교습어업) ① 제7조·제40조·제43조 또는 제48조에 따른 어업 외의 새로운 어구·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어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상태와 어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7조·제40조·제43조 또는 제48조에 따른 어업 외의 새로운 어구·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어업자, 제1항에 따른 신청자 및

시험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시험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험어업계획을 세워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40조·제43조 및 제48조에도 불구하고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교습어업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어업허가 등의 유효기간) ① 제40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중에 허가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을 다른 어선·어구 또는 시설로 대체하거나 제45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종전 어업허가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의 보호 및 어업조정과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8조(신고어업) ① 제7조·제40조·제43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신고일을 기준으로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에 한정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신고인에게 어업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고어업자의 주소지와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 수역에서 연간 60일 이상 조업을 할 것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어업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수면에서 그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하여 조업하지 아니할 것
3. 수산자원보호나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⑧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어업의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어 신고의 효력을 잃은 때에는 그 신고를 한 자는 제9항에 따라 해당 공적장부(公的帳簿)에서 말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신고어업의 종류 및 효력 상실사유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한 때
2. 제7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제한·정지 처분을 2회 이상 위반한 때
3. 제49조제3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폐지신고를 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때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가 효력을 잃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어업에 관한 공적장부에서 이를 말소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9조(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변경·폐업 등) ① 제40조·제43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허가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48조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면 신고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40조·제43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해당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가 그 어업을 폐업하거나 어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의 사항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준용규정) ①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제15조, 제18조, 제27조제1항·제4항·제5항(구획어업 중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여 하는 어업만 해당한다),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제3항, 제31조, 제33조, 제34조제1호·제3호·제4호·제6호 및 제52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② 제46조에 따른 시험어업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③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제4장 어획물운반업

제51조(어획물운반업 등록) ①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그 어획물운반업에 사용하려는 어선마다 그의 주소지 또는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포획·채취하거나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양식한 수산동식물을 운반하는 경우

2. 제27조에 따라 지정받은 어선이나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제48조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포획·채취하거나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양식한 수산동식물을 운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어획물운반업의 시설기준과 운반할 수 있는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종류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와 해당 어선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어획물운반업의 제한·정지 또는 취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한 어획물운반업을 제한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외국의 어업에 관한 법령 또는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목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한 때

가. 제7조제1항, 제12조, 제15조제1항, 제27조제1항·제4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 제48조제1항·제4항·제6항, 제55조, 제63조

나.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호·제3호·제4호·제6호

2. 「관세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어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요청한 경우

3. 제51조를 위반하거나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제3항, 제31조, 제33조제1항제2호·제3호·제7호, 제34조제1호, 제49조제1항·제3항·제4항을 위반한 때

4.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 및 제44조의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때

5. 제67조제2항 및 제69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또는 명령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등) 수산물가공업의 등록과 신고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54조(준용규정) 어획물운반업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제3항, 제31조, 제33조제1항제2호·제3호·제7호, 제34조제1호·제3호·제4호, 제40조제5항, 제43조, 제44조, 제48조제5항 및 제49조제1항·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제5장 어업조정 등

제55조(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① 행정관청은 어업단속, 위생관리, 유통질서의 유지나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어획물 및 그 제품의 처리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2.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
3. 근해어업의 허가 정수(定數) 제한 등 근해어업 허가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
4. 어업자·어업종사자의 수 또는 자격
5.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제한이나 금지
6.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容器)의 제한이나 금지
7. 포획 또는 채취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의 양육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 또는 그 지정의 취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조업수역 등의 조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사이의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조업수역의 지정 등의 방법으로 조업수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시·군·자치구 사이의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조업수역의 지정 등의 방법으로 조업수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구별·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어업자 등 상호 간의 공동조업수역의 설정이나 상호 조업허용 또는 조업제한사항 등 조업수역 조정의 합의에 대하여 어업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조업수역의 제한이나 조건에도 불구하고 조업수역·조업기간·조업척수(操業隻數) 및 조건 등을 정하여 그 조업을 허용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57조(허가정수 등의 결정) ① 제40조제4항 또는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업허가의 정수를 정할 때에는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그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수를 정할 때에는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8조(어선의 선복량 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40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선복량(船腹量)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선복량을 제한할 때에는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그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복량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어선의 장비와 규모 등) ① 어선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설비하지 아니하면 어업에 사용될 수 없다.

② 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규모·선령·기관, 부속선의 수·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0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재질·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이하 “어구의 규모등”이라 한다)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는 어구의 규모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 종류별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수산자원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어업자협약을 체결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어업자 협약 승인을 받은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에 소속된 어업자

2.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공동체에 소속된 어업인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가 어구의 규모등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립수산물과학원의 의견을 들은 후 제95조에 따른 시·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어구의 사용 대상이 되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2. 다른 어업에 미치는 영향

제61조(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관계자가 어구의 규모등이 적합한지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자신의 어구의 규모등에 대해서만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절차 및 확인 결과의 표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유어장의 지정 등) ①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은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이 면허받은 어업과 허가받은 어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역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유어장(遊漁場)(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정된 유어장의 유효기간은 그 유어장에 속하는 면허어업 또는 허가어업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유어장으로 지정된 수면에 둘 이상의 면허어업 또는 허가어업이 있는 때에는 그 면허어업 또는 허가어업 중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어업의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③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이 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어(遊漁)의 방법, 이용료, 이용자 준수사항, 그 밖에 유어장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어장으로 지정을 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유어의 방법, 이용료, 이용자 준수사항, 그 밖에 유어장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유어장의 면적기준 및 시설기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⑤ 유어장의 지정, 유어장에서의 수산자원의 조성, 포획·채취 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 포획·채취의 방법, 유어장의 관리규정, 관리선의 운영, 유어장의 시설기준, 유어장 이용자의 출입, 유어장에서의 안전사고예방 및 환경오염방지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는 제7조·제40조·제43조 및 제48조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어장이 제5항에 따라 관리·운영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3조(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① 대한민국 정부와 어업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을 하려는 자는 그 외국의 해당 행정관청으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대한민국 정부와 어업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을 하는 자는 그 외국의 권한 있는 행정관청이 불법어업방지를 위하여 어선의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을 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5조(어구·시설물의 철거 등) ①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어업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어업시기가 끝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어구·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어구나 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근해어업은 시·도지사가, 면허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철거의무자가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어구·시설물과 양식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철거의무자가 그 철거의무기간이 지났어도 그 어구·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구·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할 수 있다.
- ④ 어업의 면허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설치한 어구·시설물과 양식물에 관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5조의2(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행정관청은 어구·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알 수 없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어구·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40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구·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2. 제60조제1항에 따른 어구 사용량,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을 위반한 어구·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3. 제76조에 따른 어구실명제를 위반한 어구·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어구·시설물의 철거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어구·시설물의 보관, 처리, 반환 및 귀속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4. 22.]

제65조의3(어획물에 대한 방류조치 등) ① 행정관청은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로 얻은 어획물이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고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어획물을 즉시 방류하여야 한다.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어획물을 즉시 방류하기 어려운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획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거나 매각·폐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4. 22.]

제66조(표지의 설치 및 보호) ① 행정관청은 어업자에게 어장 및 어선의 표지를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표지를 이전·손괴·변조 또는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7조(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과 처분이,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과 처분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은 수산시책으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인, 어획물운반업자, 어획물운반업종사자 또는 수산물가공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8조(해기사면허의 취소 등) ① 행정관청은 어업종사자나 어획물운반업종사자가 이 법이나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이 법이나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기사면허의 취소, 정지 또는 해기사에 대한 견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9조(어업감독 공무원) ① 어업감독 공무원은 어업조정, 안전조업, 불법어업 방지 및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장, 어선, 사업장, 사무소, 창고,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정선(停船)이나 회항(回航)을 명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은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토지에 들어가서 측량,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측량, 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을 옮기게 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행하는 어업감독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선명령이나 회항명령, 측량, 검사, 어업감독 공무원의 증표와 그 자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사법경찰권) 어업감독 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제6장 어구의 관리 등

제71조(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① 어구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공급하는 것(이하 “어구생산업”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어구생산업자”라 한다) 및 어구를 판매하는 것(수입하여 유통,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어구판매업”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어구판매업자”라 한다)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이하 “어구생산업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업을 폐업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5. 4. 22.>
④ 삭제 <2025. 4. 22.>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이하 “어구생산업등”이라 한다)의 신고,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4. 22.>

제72조(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의 의무) ① 어구생산업자등은 생산 또는 판매한 어구의 종류·구매자·수량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전자화된 기록을 포함한다)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어구생산업자등은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73조(영업정지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구생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을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을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구생산업등을 신고한 경우
2.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3. 제72조에 따른 기록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4. 제72조에 따른 기록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훼손·제거한 경우
5.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영업을 폐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어구생산업등의 신고를 할 수 없다.

제74조(어구 판매량 등의 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구의 판매량과 판매장소·판매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 수산자원의 증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어업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 안전사고의 예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어구의 판매량과 판매장소·판매방법 등의 제한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5조(실태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어구의 생산·유통·사용·관리 및 폐어구와 유실어구의 수거·처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단체의 장 또는 어구생산업자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어구실명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 어업활동을 위하여 제3조 각 호의 수면 등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3조에 따른 수면(이하 “수면”이라 한다)에 어구를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소유자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어구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구의 표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2(어구관리기록부 작성 및 유실어구 신고) ① 어구의 사용과 유실이 많이 발생하는 어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어구관리기록부”라 한다)를 작성하여 어선에 비치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출항·입항 당시 어선에 적재한 어구의 종류 및 수량
2. 어장이나 수면 등에 설치한 어구의 종류 및 수량
3. 어구를 폐기한 장소, 종류 및 수량
4. 설치한 어구 중 유실된 어구(자연재해 등으로 분실된 어구를 포함한다)의 종류 및 수량
5.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어업인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유실된 어구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그 사실을 행정관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어구관리기록부의 작성 내용·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유실된 어구의 규모와 신고 내용·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4. 22.]

제76조의3(어구관리기록부의 확인·점검) ① 행정관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구관리기록부를 적정하게 작성·비치·보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업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명하거나 어선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서류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4. 22.]

제77조(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 지정 등) ①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어구 수거 해역 및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제15조, 제40조, 제43조 및 제46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을 정한 경우 그 대상 해역에서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면에 설치한 어구를 수거하도록 명하거나 제50조에서 준용되는 제33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어업을 제한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어구 수거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역 여건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행정관청은 제3항에 따른 어구 수거 기간 동안 수거되지 아니한 어구를 제78조제1항에 따라 수거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업 제한 절차, 어구 수거 명령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폐어구 등의 직접 수거 등) ① 행정관청은 수면에 버려진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수거하여 처리·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조사·측정 활동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선박 또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 업무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폐기물수거업의 등록을 한 자, 「어장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어선법」 제2조에 따른 어선을 소유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처리 또는 보관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소유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조(폐어구 집하장등의 설치 등) ① 행정관청은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수거·처리하기 위한 집하장 및 어구 보관장소(이하 “집하장등”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집하장등에 반입되거나 반출되는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집하장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 9. 16.>

④ 집하장등의 세부적인 설치·운영 기준과 관리대장의 기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9. 16.>

제80조(폐어구 수거·처리에 관한 사업 등) ① 행정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어구 수매사업 등 폐어구의 수거·처리에 관한 사업을 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집하장등이 설치된 해당 지역 주민을 위하여 주변 환경 개선 등 주민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제81조(어구·부표의 회수 촉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부표(이하 “어구등”이라 한다)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어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어구등의 회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출고 또는 수입 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어구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어구보증금은 어구등의 출고 또는 수입 가격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구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어구등을 구입하는 자가 지급한 어구보증금을 제83조에 따른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이관하여야 하고,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반환된 어구등을 확인한 후 어구등을 반환한 자에게 어구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어구등을 구입한 자가 어구등을 반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구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③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어구보증금 취급에 드는 비용(이하 “취급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급수수료는 물가변동 등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어구보증금의 환급, 취급수수료의 지급, 관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어구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어구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등에 어구보증금 환급 관련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⑤ 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어구등의 반환 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2조(미환급보증금의 처리) ①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제81조제2항에 따라 어구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이하 “미환급보증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어구등의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2. 어구등의 보관, 회수거점 등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3. 어구등의 효율적 회수와 처리 방안의 연구·개발
4. 전년도에 받은 어구보증금보다 전년도에 어구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補填)
5. 어구등의 회수에 드는 비용
6. 취급수수료 지급
7. 어구보증금과 취급수수료의 집행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8. 어업인 등 지역주민 지원사업
9. 그 밖에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②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매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환급보증금의 사용계획 및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미환급보증금의 산출, 사용계획 및 결과의 보고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3조(어구보증금관리센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구보증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제81조제2항에 따른 어구보증금의 환급·관리
2. 제81조제3항에 따른 취급수수료의 지급·관리
3. 제82조에 따른 미환급보증금의 관리
4. 그 밖에 어구보증금 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설치·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대하여 어구 등의 회수율 제고 등 원활한 어구보증금 제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기술적 지원의 대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수산업의 육성

제85조(근해어업 등의 구조개선 등)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시행일: 2022. 7. 12.] 제85조

제86조(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40조제4항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한 사항
2. 제42조에 따른 혼획의 관리
3. 제44조에 따른 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
4. 제55조에 따른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5. 제58조에 따른 어선의 선복량 제한
6. 제59조에 따른 어선의 장비와 규모 등
7. 제60조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8. 그 밖에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내용 및 그 적용기간, 대상자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7조(시·도 연안자원관리) ①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어획량을 제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는 관할 수역 내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제60조에 따른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가 제1항의 사항을 따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제95조에 따른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받은 사항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립수산물과학원의 의견, 제3항에 따른 수정·보완 사항 및 수산자원보호나 어업조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장 보상·보조 및 재결

제88조(보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34조제6호(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면허·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에 대하여 제한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제50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이 제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69조제2항에 따른 측량·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 이전명령이나 제거명령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보상의 원인이 된 처분으로 이익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수익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은 수익자에게 그가 받은 이익의 범위에서 보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결정된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국제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수익자는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보상을 하지 아니하면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 다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 지급방법, 그 밖에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수질오염에 따른 손해배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수질이 오염되어 면허받은 어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그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1. 산업시설이나 그 밖의 사업장의 건설 또는 조업

2. 선박 또는 해양시설(「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을 말한다)

3. 해저광구의 개발 등

② 제1항의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가 피해가 발생한 후 그 사업을 양도한 때에는 피해 발생 당시의 시설의 경영자와 시설을 양수(讓受)한 경영자가 연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90조(보상금의 공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88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1. 보상을 받을 자가 보상금 받기를 거절하거나 기피할 때
 2. 보상을 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3. 보상의 목적인 어업권·토지 또는 물건에 관하여 등록하거나 등기한 권리자가 있을 때. 다만, 그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② 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등록하거나 등기한 권리자 또는 소송 당사자는 공탁한 금액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91조(입어에 관한 재결) ① 제39조제1항에 따른 입어에 관하여 분쟁이 있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어업권자 또는 입어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결 신청을 받으면 제95조에 따른 해당 시·도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결하여야 한다.

제92조(어장구역 등에 관한 재결) ① 어장의 구역, 어업권의 범위, 보호구역 또는 어업의 방법에 관하여 분쟁이 있으면 그 관계인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결을 할 때에는 제95조에 따른 해당 시·도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3조(보조 등) ① 행정관청은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대상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94조(보상·보조 및 재결에 관한 세부규칙)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상·보조 및 재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 수산조정위원회

제95조(수산조정위원회의 설치) 어업에 관한 조정·보상·재결 또는 양식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중앙수산조정위원회를, 시·도 및 시·군·자치구에 시·도수산조정위원회 및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를 각각 둔다.

제96조(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①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0. 31.>

1. 어업별 분쟁의 사전·사후 조정
2. 시·도 사이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3. 기본계획의 심의
4.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복량 제한의 심의
5.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6. 해양수산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에 관한 응답
7. 그 밖에 이 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및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②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 시·도수산조정위원회가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도 수행한다.<개정 2023. 10. 31.>

1.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심의·조정
2. 시·군·자치구 사이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3. 한시어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시행계획의 심의
5.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관한 내용의 심의
6.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7. 시·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에 관한 응답
8. 그 밖에 이 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및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③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2. 개발계획의 심의
 3. 제7조에 따른 면허어업의 적격성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마을어업의 어장관리규약 등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5.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6. 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각종 어업규제에 관한 건의
 7. 시장·군수·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에 관한 응답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합동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95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관계 공무원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조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행정관청은 특별

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7조(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제95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는 어업인의 대표 및 수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로 구성한다.

② 중앙수산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0. 31.>

③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④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선임, 위원의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9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분쟁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조정을 위하여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 어업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어업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본다.

⑥ 시·도수산조정위원회,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 및 제5항에 따른 어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장 보칙

제98조(서류 송달의 공시) ① 행정관청은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 등을 통지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관청이 제1항에 따라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30일이 지난 날에 그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99조(과징금 처분) ① 행정관청은 제33조제1항제8호·제9호(제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를 받은 어업 등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그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사용(보조 또는 용자를 포함한다)하되, 어업지도사업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의 사용 절차·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관청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00조(포상)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를 그 관계 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 그 밖에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의 확립에 특별히 이바지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褒賞)할 수 있다.

제101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서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4. 22.>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장 또는 「어촌·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장이나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4. 22.>

[제목개정 2025. 4. 22.]

제102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면허·허가·승인·등록의 신청 또는 그 변경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나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조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03조(청문) 행정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0조제2항에 따른 어업권의 취소
2. 제34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면허어업의 취소
3. 제39조제4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나 입어의 제한·정지 또는 금지
4. 제52조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
5. 제5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지정의 취소
6. 제62조제6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7. 제73조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 또는 영업의 폐쇄

제104조(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정책의 합리적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업종별·수역별 조업상황과 어획실적 및 수산자원 분포현황 등을 조사하여 수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제51조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조업상황·어획실적·전재량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 및 중앙회장

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95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1장 벌칙

제10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이 법에 따른 어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경영한 자
2.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처분을 위반한 자
3.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3조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한 자
4. 제63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한 자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제10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3조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면허·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2. 제19조제1항·제3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어업권을 이전·분할 또는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와 그 어업권을 이전 또는 분할받았거나 담보로 제공받은 자
3. 제27조제1항(제5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선박을 사용한 자
4. 제27조제4항(제5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그 지정을 받았거나 승인을 받은 어장구역이 아닌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하여 관리선을 사용한 자
5. 제31조제1항(제50조제1항이나 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실상 그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와 어업권자 또는 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사실상 그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한 자
6. 제32조를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자와 임차한 자
7.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혼획한 자
8.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동식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한 자

9. 제55조의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제10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구역에서 해당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또는 어업권의 행사에 방해되는 행위를 한 자
2.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호구역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어업행위를 한 자
3. 제33조제1항제1호、제4호、제6호、제8호、제9호(제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한、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처분을 위반한 자
4. 제6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다가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국내로 도주한 자
5. 제66조를 위반하여 어선에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6. 제69조제1항에 따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어선의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혼획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어구를 사용한 자
2.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혼획으로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지정된 매매장소 외에서 매매 또는 교환한 자
3. 제58조에 따른 선복량 제한을 위반한 자
4. 제60조제1항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을 위반한 자
5. 제76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구에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제110조(몰수) ① 제106조, 제107조, 제108조제3호、제5호 및 제109조의 경우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어획물、제품、어선、어구 또는 폭발물이나 유독물은 몰수할 수 있다. 다만, 제106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어획물、어선、어구를 몰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11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6조부터 제10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0조제1항(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그 어업권을 취득하거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어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어업을 시작한 후 1년이 지났으나 계속하여 해당 어장을 휴업 상태로 둔 자
2. 제45조제2항에 따라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60일로 한다) 이내에 신고를 아니하거나 90일 이내에 어업허가 어선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
3. 제49조제3항(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유어장을 운영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1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구보증금을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81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구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어구보증금의 환급문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을 한 자 또는 어업을 경영한 자
 3. 제37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업권을 특정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한 어업권자와 그 어업권을 행사한 자
 4. 제37조제2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의 변경 등 시정조치를 위반한 자
 5. 제38조에 따른 어업권의 행사의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한 자와 그 위반행위를 도운 어업권자
 6.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어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입어의 제한·정지 또는 금지 처분을 위반한 자
 7. 제4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어업을 경영한 자
 8. 제48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신고어업자
 9. 제49조제1항(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어선법」 제17조에 따른 변경등록 사항은 제외한다.
 10. 제69조제1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11. 제69조제2항에 따른 측량·검사와 장애물의 이전·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어구생산업 등을 한 자
 13. 제73조제1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어구생산업 등을 계속한 자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5. 4. 22.>
 1. 제36조제3항에 따른 어장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어업권자

2. 제49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어선법」 제17조에 따른 변경등록 사항은 제외한다.
 3. 제50조제1항 또는 제54조에서 준용하는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을 한 자 또는 어업을 경영한 자
 4. 제65조제1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자
 5. 제66조를 위반하여 어장에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거나 어장 및 어선에 설치한 표지를 이전·손괴·변조 또는 은폐한 자
 6. 제71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록의 작성 또는 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기록을 거짓으로 기재 또는 훼손·제거한 자
 8. 제75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요청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 8의2. 제7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비치·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 8의3. 제7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유실어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77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면에 설치한 어구의 수거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 제96조제5항에 따른 질문·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11. 제104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제4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관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25. 4. 22.>

부칙 <제18755호, 2022. 1. 1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1항 및 제8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1조부터 제84조까지 및 제1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벌칙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에 대한 어업면허 발급에 대한 결격사유는 이 법 제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제3조**(면허의 금지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의 금지 사유가 있는 경우(제49조,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법 제11조의 개정규정(제50조,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용한다.
- 제4조**(어업의 개시 등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31조에 따른 어업의 개시 등에 관한 사항(제49조,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제

30조의 개정규정(제50조,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용한다.

제5조(면허어업의 취소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35조에 따른 면허어업의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제49조,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법 제34조의 개정규정(제50조,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7조(어장이용개발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개발계획기본지침 및 개발계획세부지침, 어장이용개발계획은 이 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개발계획기본지침 및 개발계획세부지침, 어장이용개발계획으로 본다.

제8조(외국인 등에 대한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5조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한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는 이 법 제5조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한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로 본다.

제9조(어업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치망어업,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치망어업, 마을어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한정어업면허를 받은 경우(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정어업면허를 받은 것(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제10조(면허의 제한 및 조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12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업면허에 대하여 제한 및 조건을 붙인 것(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제12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제한 및 조건(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34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을 제한한 것(제49조,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제33조에 따라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을 제한한 것(제50조,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제11조(우선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에 따라 신청된 면허에 대한 우선순위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수산업법」 제13조에 따른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에 따라 신청된 허가에 대한 우선순위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수산업법」 제41조의2에 따른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제12조(어업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16조, 제17조에 따라 등록한 어업권원부와 취득한 어업권은 이 법 제16조, 제17조에 따라 등록한 어업권원부와 취득한 어업권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의 이전·분할 또는 변경은 종전의 「수산업법」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39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업권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한 것은 이 법 제38조에 따라 어업권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처분한 때의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25조에 따른 처분한 때의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제25조에 따른 처분한 때의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으로 본다.

제14조(관리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승인을 받은 관리선(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승인된 관리선(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제15조(보호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29조에 따라 정한 보호구역은 이 법 제28조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본다.

제16조(휴업 신고 및 어업권 포기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30조에 따른 휴업 신고 및 어업권 포기의 신고에 관한 사항(제49조,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제29조에 따른 휴업 신고 또는 어업권 포기의 신고에 관한 사항(제50조,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제17조(어장관리규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38조에 따라 정한 어장관리규약은 이 법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본다.

제18조(입어 등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입어 등의 제한을 한 것은 이 법 제39조에 따른 입어 등의 제한을 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어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 제40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것(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산업법」 제42조에 따라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 제43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것(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제20조(혼획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41조의3에 따라 설정된 혼획 허용과 관련한 기준은 이 법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본다.

제21조(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43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을 붙인 경우(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 법 제44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을 붙인 것(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제22조(어업허가 지위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44조에 따른 어업허가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제45조에 따른 어업허가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

으로 본다.

제23조(시험어업 및 연구어업·교습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교습어업(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제46조에 따른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교습어업(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제24조(신고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어업을 신고한 경우(제49조,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신고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 제48조에 따른 어업의 신고를 한 것(제50조,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제25조(어획물운반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57조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이 취소되기 전까지 이 법 제51조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61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명한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은 이 법 제55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명한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으로 본다.

제27조(조업수역 등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산업법」 제62조에 따라 조정한 조업수역 등은 이 법 제56조에 따라 조정한 조업수역 등으로 본다.

제28조(허가정수 등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63조에 따라 결정한 허가정수 등은 이 법 제57조에 따라 결정한 허가정수 등으로 본다.

제29조(어선의 선복량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63조의2에 따라 제한한 어선의 선복량은 이 법 제58조에 따라 제한한 어선의 선복량으로 본다.

제30조(어선의 장비와 규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64조에 따라 정한 어선의 장비와 규모 등은 이 법 제59조에 따라 정한 어선의 장비와 규모 등으로 본다.

제31조(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64조의2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은 이 법 제60조에 따라 어구의 규모등을 제한한 것으로 본다.

제32조(유어장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65조에 따라 지정한 유어장은 해당 유어장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 제62조에 따라 지정한 유어장으로 본다.

제33조(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67조에 따라 외국의 해당 행정관청에서 받은 어업허가는 해당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 제64조에 따라 외국의 해당 행정관청에서 받은 어업허가로 본다.

제34조(표지의 설치 및 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설치할 것을 명한 어장·어선 및 어구의 표지는 이 법 제66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설치할 것을 명한 어장·어선 및 어구의 표지로 본다.

제35조(수산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라 설치한 수산조정위원회는 이 법 제95조에 따라 설치한 수산조정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90조에 따라 구성한 수산조정위원회는 이 법 제97조에 따라 구성한 수산조정위원회로 본다.

제36조(등록, 신고, 변경신고, 재결 신청, 보상 청구, 공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에 따른 등록, 신고, 변경신고, 재결 신청, 보상 청구, 손해배상, 공탁 등은 이 법에 따른 등록, 신고, 변경신고, 재결 신청, 보상 청구, 손해배상, 공탁 등으로 본다.

제37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수산업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38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수산업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0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5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나목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수산업법」 제40조”로 한다.

제31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를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③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8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수산업법」 제69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산업법」 제65조”를 “「수산업법」 제62조”로 한다.

④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를 “같은 법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2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로, “제17호”를 “제15호”로 한다.

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제15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40조”로 하고, 제12조제4항 중 “같은 법 제42조”를 “같은 법 제43조”로, “같은 법 제57조”를 “같은 법 제51조”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56조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69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수산업법」 제2조제12호”를 각각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63조”를 “「수산업법」 제57조”로, “같은 법 제88조”를 “같은 법 제95조”로 한다.

제24조 본문 중 “「수산업법」 제8조、제41조、제42조、제45조 및 제47조”를 “「수산업법」 제7조、제40조、제43조、제46조 및 제48조”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45조”를 “「수산업법」 제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65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62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으로,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4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산업법」 제45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46조제3항”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42조”를 “「수산업법」 제43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47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48조”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70조, 제81조 및 제83조”를 “「수산업법」 제67조, 제88조 및 제9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86조 및 제87조”를 “「수산업법」 제93조 및 제94조”로 한다.

⑥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같은 법 제41조”를 “같은 법 제40조”로, “같은 법 제47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를 “같은 법 제88조부터 제94조”로 한다.

⑦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81조”를 “「수산업법」 제88조”로 한다.

⑧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수산업법」 제69조”로 한다.

⑨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각각 “「수산업법」 제33조제1항제1호”로 하고, 제16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35조제1호”를 “「수산업법」 제34조제1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6호”를 “「수산업법」 제33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산업법」 제72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69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81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88조제2항”으로 한다.

⑩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하고, “같은 법 제41조”를 “같은 법 제40조”로, “같은 법 제47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를 “같은 법 제88조부터 제94조”로 한다.

⑪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하고, “같은 법 제41조”를 “같은 법 제40조”로, “같은 법 제47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를 “같은 법 제88조부터 제94조”로 한다.

⑫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 본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7조”로, “같은 법 제41조”를 각각 “같은 법 제40조”로, “같은 법 제47조”를 각각 “같은 법 제48조”로 한다.

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8호 중 “「수산업법」 제59조”를 “「수산업법」 제53조”로 한다.

⑭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71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68조제1항”으로 한다.

⑮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41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제41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47조제1항”을 각각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수산업법」 제69조”로 한다.

1[^]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같은 법 제41조 및 제42조”를 “같은 법 제40조 및 제43조”로, “같은 법 제47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후단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수산업법」 제69조”로 한다.

1& 어선안전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후단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수산업법」 제69조”로 한다.

1*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하고,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1호 및 제3호”를 “같은 법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전단 및 제4조제3항 전단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수산업법」 제13조제7항”을 “「수산업법」 제1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산업법」 제35조(같은 법 제49조”를 “「수산업법」 제34조(같은 법 제50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산업법」 제35조”를 “「수산업법」 제34조”로 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42조、제47조、제66조”를 “「수산업법」 제40조、제43조、제48조、제63조”로 한다.

1(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40조”로 한다.

제5조제3항 전단 및 제6조제4항 전단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제41조 및 제61조”를 “제40조 및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86조”를 “「수산업법」 제93조”로 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44조”를 “「수산업법」 제45조”로 한다.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9호마목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수산업법」 제40조”로 한다.

2!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및 제8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2조제13호”를 각각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76조”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로 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3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9조”를 “「수산업법」 제8조”로 한다.

제289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47조”를 “「수산업법」 제48조”로, “같은 법 제48조제1항”을 “같은 법 제49조제1항”으로, “제54조제1항”을 “「양식산업발전법」 제6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산업법」 제7조제3항, 제19조제1항제2호, 제27조제5항, 제28조제5항(정치망어업의 어업권 보호구역에 한정한다), 제37조제1항, 제40조제4항(연안어업의 부속선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49조제4항(신고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62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제5항(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세운 총허용 어획량계획에 한정한다)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6항, 제23조제3항에서 대

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91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2호”를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로 한다.

2%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하고, “같은 법 제41조”를 각각 “같은 법 제40조”로 하며, 제22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 중 “같은 법 제47조”를 각각 “같은 법 제48조”로 하고, 제22조제4항 중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를 “같은 법 제88조부터 제94조”로 한다.

2^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1항 및 제93조제6항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하고, “같은 법 제41조”를 각각 “같은 법 제40조”로 하며, 제89조제1항 및 제93조제6항 중 “같은 법 제47조”를 각각 “같은 법 제48조”로 한다.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단서 중 “「수산업법」 제81조”를 “「수산업법」 제88조”로 한다.

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 중 “「수산업법」 제67조”를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로 한다.

2(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 전단 중 “「수산업법」 제8조、제41조、제47조”를 “「수산업법」 제7조、제40조、제48조”로 한다.

3)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가목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 제27조제1항、제4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3조,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7조제1항、제4항, 제66조, 제67조”를 “「수산업법」 제7조제1항, 제27조제1항、제4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1항、제4항, 제63조, 제64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 및 라목 중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을 각각 “「수산업법」 제5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같은 법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을 “같은 법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같은 법 제34조제1항”을 “같은 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나. 「수산업법」 제12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제한이나 조건,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정어업면허의 면허기간 등,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출항·입항의 제한,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제한이나 조건,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어업조정에 관한 명령 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제6호에 따른 수산자원회복을 위한 명령, 「양식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른 면허의 조건,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면허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정양식면허의 면허기간 등,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휴업기간,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정지,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양식업의 종류, 규모, 양식 품종 등에 관한 제한이나 조건,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의 조정에 관한 명령

3@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8조·제41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7조·제40조”로 한다.

3#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2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3\$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한다.

3%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2. 6. 10.>

제49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한다.

제4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수산업법」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959호, 2022. 6. 10.>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8755호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9조제35항 중 “제49조제3호”를 “제49조제1항제3호”로 한다.

부칙 <제19807호, 2023. 10. 3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 <제19908호, 2024. 1. 2.>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7호 중 “ 「어선안전조업법」 제27조제1항 ”을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으로 한다.

부칙 <제20940호, 2025. 4.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055호, 2025. 9. 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산업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3호, 2026. 6. 23.,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근해어업) 051 - 773 - 5519, 5520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면허어업, 연안어업, 신고어업) 051 - 773 - 5517, 5518
 해양수산부 (어구순환기획과 - 어구의 관리 등) 051 - 773 - 5604, 560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어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 수립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개발계획기본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개발계획 수립연도의 1월 31일까지 개발계획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은 관할 수면(水面)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세부지침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그 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같은 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개발계획을 매년 4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그 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수면에 대하여 다시 어업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개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세우려는 수면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또는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 또는 협의 의견을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법 제4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위하여 새로운 수면을 추가로 개발하려는 경우

2. 어업분쟁의 해소 또는 어업 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⑦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 면허나 어업허가를 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협의요청서에 법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하는 협의요청서는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치망어업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
3.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
4.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으면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수산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공동신청)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어야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신청한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면허일 또는 허가일 전까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분 변경 신고서에 신청인의 지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신청서에 대표자를 적지 않았거나 신청서에 적은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어업의 면허일 또는 허가일 전까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자 선정·변경 신고서에 대표자의 자격 및 그 변경(대표자를 변경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2장 면허어업

제5조(면허신청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개발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 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0조 각 호에 따른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수산기술자만 해당한다)
 2.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3. 어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어업에 종사한 자만 해당한다)
 4. 여권 사본 등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만 해당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를 받으면 법 제95조에 따른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6월 30일까지 어업면허를 할 수면별로 신청인에 대한 면허의 적격성을 판단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1인이면 시·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면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우선순위와 필요한 서류의 제출기간을 적은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통지된 제출기간 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어업면허를 해야 한다.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2.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다만, 어업면허를 받았던 자가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같은 위치의 어장에서 같은 종류의 어업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현재 유효한 면허를 받은 어업권자의 주소 및 거소를 알 수 없어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로 동의서를 갈음한다.

제6조(정치망어업 및 어구의 종류)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치망어업 및 어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정치망어업: 10헥타르 이상의 구획된 수면에 낙망류(落網類), 승망류(昇網類), 죽방렴(竹防簾),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치성(定置性) 어구(이하 이 조에서 “정치성어구”라 한다)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중형정치망어업: 5헥타르 이상 10헥타르 미만의 구획된 수면에 정치성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소형정치망어업: 5헥타르 미만의 구획된 수면에 정치성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제7조(마을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 등)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이하 “마을어업”이라 한다) 어장의 수심 한계는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5미터 이내(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7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6.

4.>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을어업의 면허를 하려면 어업조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어장의 수심 한계 안의 수면을 실측하여 구획해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장의 수심 한계 안의 수면이라 하더라도 먼 거리에 위치한 낙도(落島) 또는 무인도와 연결(連接)한 수면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마을어업의 면허를 해서는 안 된다.

- 제8조(면허의 결정사유가 되는 어장 면적의 기준)** ① 법 제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60헥타르를 말한다. 다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에 대해서는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거나 어업조정 및 수면의 종합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기준을 완화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구별수협 및 어촌계 외의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본문에 따른 어장 면적의 범위에서 어업별·품종별로 면허의 결정사유에 해당하는 어장 면적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구별수협 및 어촌계 외의 자에 대해서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면허의 결정사유에 해당하는 어장 면적의 기준을 완화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어장 면적을 계산할 때에는 지분으로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 면적을 포함하고, 개인 어업권의 어장 면적은 면허신청인의 배우자와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취득한 어장 면적과 그 면허신청인이 이미 취득한 어장 면적에 새로 면허를 신청한 어장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9조(면허의 금지 요청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어업면허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금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어업면허의 금지를 요청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2. 어업면허의 금지를 요청하는 기간
 3. 어업면허의 금지를 요청하는 사유
 4. 그 밖에 어업면허의 금지에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어업면허의 금지를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요청받은 사항에 관하여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 해당 수면에 대한 어업면허를 금지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어업면허를 금지하는 수면의 위치와 어업면허의 금지기간 등을 공고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어업면허가 취소된 자의 어업면허 금지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어업면허 중 그 일부가 취소된 후 취소되지 않은 다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만료된 어업면허와 동일한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수산기술자)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기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어업생산관리기사, 수산제조산업기사 이상(수산제조산업기사, 수산제조기사, 수산제조기술사를 말한다), 수산양식기능사 이상(수산양식기능사, 수산양식산업기사, 수산양식기사, 수산양식기술사를 말한다) 또는 어로기능사 이상(어로기능사, 어로산업기사, 어로기술사를 말한다)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직 공무원이나 수산 분야 연구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중 수산 분야의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의 수산 관련 학과를 전공으로 하여 졸업한 사람
4.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어업경영인”이라 한다)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술교육을 마친 사람

제11조(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단축사유)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수면이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면허·허가동시갱신을 하는 해역 및 어장으로 고시된 경우
2. 해당 수면이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보호수면으로 지정·공고된 경우

제12조(면허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20조 본문에서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어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그 성명 또는 주소
2. 법 제23조에 따른 어업권의 공유자 중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그 대표자
3. 선박 명칭이 변경된 경우 그 선박 명칭

제13조(어업권 공유자의 동의를 위한 공고) 어업권의 공유자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6. 4. 21.>

1. 면허번호
2. 어업의 종류, 어구의 명칭 및 설치방법
3. 공유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4.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5.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기간 및 방법

제14조(관리선의 지정과 그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어장관리
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장의 관리 효율성
과 어장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어선 중 마을어장 형망선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관리선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지정해
야 하며, 자원관리채취선은 이미 마을어업 어장의 관리선으로 지정된 어선과 그 어선을 대체
하여 사용될 어선으로 한정하여 지정해야 한다.<개정 2024. 1. 9.>

제15조(어업의 시작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산종자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를 말
한다.

제16조(공익의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정지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어선의 계류(繫留) 또는 출항·입항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법 제34조제6호(법
제33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면허를 취
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의 제한, 어업면허의 취소를 요청하는
사유와 범위
 2. 어업의 종류, 면허번호 및 어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의 성명을 말한다)·주소·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3. 해당 조치가 필요한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4. 해당 조치가 어업에 미치는 손실에 대한 보상대책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어업권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치사
항을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어업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사항의 결정기준과 이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제17조(국방의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정지 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를 위하여 면허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등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상이나 해안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경우
2. 해상이나 해안에 위치한 주요 군사기지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②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방을 위하여 면허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등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안에서 적의 침투를 저지하거나 방어하기 위한 경우
2. 어선의 피랍 방지 등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전략적 및 기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한 경우

제18조(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의 공고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를 하거나 면허한 어업에 대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제한 또는 정지 등의 처분 및 법 제34조에 따른 취소 처분을 할 때에는 그 면허사항 또는 처분 내용을 공고하고 해당 어업권을 등록한 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지구별수협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구별수협이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치망어업의 어업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
2. 해당 지구별수협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조합원 중 그 어업권의 행사를 희망하는 자가 없는 경우
3. 해당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외의 조합원이 해당 어업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거나 어업분쟁의 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지구별수협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제20조(어업권 행사의 제한 등) 법 제3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법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어장의 입어 또는 어업권의 행사가 제한되고 있는 자
 - 나. 어업면허가 금지되고 있는 자
 - 다. 어업허가가 금지되고 있는 자
2. 법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에 따라 해당 어장의 입어 또는 어업권의 행사가 제한되고 있는 자
3. 법 제9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제3장 허가어업과 신고어업

제21조(근해어업의 종류)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2척의 동력어선으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멸치는 제외한다)을 포획하는 어업
3.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별표 5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별표 5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5.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2척의 동력어선으로 별표 5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멸치는 제외한다)을 포획하는 어업
6. 대형트롤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망구전개판(網口展開板: 그물을 펼치기 위해 그물의 양 옆줄에 하나씩 달려 있는 방패모양의 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 동해구중형트롤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별표 5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에서 망구전개판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8. 대형선망어업: 총톤수 50톤 이상인 1척의 동력어선으로 선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9. 소형선망어업: 총톤수 30톤 미만인 1척의 동력어선으로 선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0. 근해채낚기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외줄낚시 또는 채낚기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1. 근해자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유자망 또는 고정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2. 근해안강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안강망(조류가 빠른 곳에 어구를 고정해 놓고 조류의 힘에 의해 어군이 자루그물 속에 들어가게 하는 강제 함정어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3. 근해봉수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봉수망·초망 또는 들망(자리돔들망은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4. 근해자리돔들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자리돔들망을 사용하여 자리돔을 포획하는 어업
15. 근해장어통발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장어통발을 사용하여 장어류를 포획하는 어업
16. 근해문어단지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문어단지를 사용하여 문어류를 포획하는 어업

17. 근해통발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통발(장어통발과 문어단지는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8. 근해연승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주낙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9. 근해형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형망을 사용하여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
 20. 기선권현망어업: 2척의 동력어선으로 인망(저인망은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멸치를 포획하는 어업
 21. 잠수기어업: 1척의 동력어선에 잠수기를 설치하여 패류 등의 정착성수산동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형태는 별표 2와 같다.

제22조(연안어업의 종류)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4., 2024. 12. 24., 2026. 6. 23.>

1. 연안개량안강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안강망류 어망(주목망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연안선망어업: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선망 또는 양조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연안통발어업: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연안조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망 입구에 막대를 설치한 조망을 사용하여 새우류(젓새우는 제외한다)를 포획하는 어업
5. 연안선인망어업: 2척의 동력어선으로 인망(저인망은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멸치를 포획하는 어업(강원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6. 연안자망어업: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유자망 또는 고정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 연안들망어업: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초망 또는 들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8. 연안복합어업: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업
 - 가. 낚시어업: 주낙·외줄낚시 또는 채낚기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나. 문어단지어업: 문어단지를 사용하여 문어류를 포획하는 어업(강원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 다. 손꽂치어업: 손으로 꽂치를 포획하는 어업
 - 라. 패류껍질어업: 소라·피뿔고둥 등 패류껍질 또는 토기,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패류 껍질 모양의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마. 패류미끼망어업: 그물로 만든 주머니에 미끼를 넣어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목포시·영광군·함평군·무안군·신안군의 해안만 해당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형태는 별표 2와 같다.

제23조(구획어업의 종류)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이하 “구획어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간망어업: 건간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건망어업: 건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들망어업: 들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선인망어업: 선인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5. 승망류어업: 호망、승망、각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6. 안강망어업: 안강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 장망류어업: 주목망、장망、낭장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8. 지인망어업: 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9. 해선망어업: 해선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0. 새우조망어업: 망 입구에 막대를 설치한 조망을 사용하여 새우류를 포획하는 어업
11. 실뱀장어안강망어업: 안강망을 사용하여 실뱀장어를 포획하는 어업
12. 패류형망어업: 형망을 사용하여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형태는 별표 2와 같다.

제24조(혼획이 허용되는 기준 등) ①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혼획(混獲)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와 수산동물 및 혼획의 허용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4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획량”이란 100킬로그램을 말한다.

제25조(한시어업의 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기관) 법 제4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장”이란 국립수산과학원장을 말한다.

제26조(신고어업)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어업(이하 “신고어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나잠어업(裸潛漁業):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낚、호미、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2. 맨손어업: 손으로 낚、호미、해조틀이 및 갈고리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② 법 제4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고한 조업장소가 제9조제3항에 따라 어업면허의 금지가 공고된 수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8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 1. 9.>

1. 법 제56조에 따른 조업수역의 조정이나 조업의 허용 또는 제한
2. 신고어업의 종류별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구를 사용할 것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가 효력을 잃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어업신고증명서를 회수해야 한다.

제27조(준용규정) ① 법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하여는 제16조(어업면허의 취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제4장 어획물운반업

제28조(어획물운반업의 등록)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 및 어획물운반업의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2. 신청인과 등록하려는 어선이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신청인과 등록하려는 어선이 법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0조제5항(법 제34조제1호·제3호·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②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 및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5장 어업조정 등

제29조(위생관리기준의 설정)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수질, 해저의 밑바닥 퇴적물(저질) 등 어장환경과 수산동식물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0조(위생관리를 위한 어획물 등 처리의 제한 또는 금지) ① 행정관청은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획물 및 그 제품의 처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국립수산물과학원장이 해당 수역의 수질이나 수산동식물이 제29조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않아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하다고 통보하는 경우
-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어획물 및 그 제품에 대한 종류별 제한·금지 기간 및 수역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제31조(근해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정수의 제한 등) ① 법 제5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 및 허가정수는 별표 5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5에서 정한 허가정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 등에 따라 특정어업이 금지되어 그 특정어업에 종사하던 자를 다른 어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어업허가를 하는 경우
 2. 외국의 관할 수역(국제기구에서 정하는 수역을 포함한다)에서 조업이 허용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남북자(이하 “남북자”라 한다)의 가족(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남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에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남북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선정한 대표자 1명을 말한다)에게 그 남북자가 허가받았던 근해어업과 같은 종류의 근해어업을 허가하는 경우
 - 가. 남북자가 어선과 함께 납북된 후 귀환하지 못하고 있거나 북한에 거주 중 사망하였을 것
 - 나. 남북자가 허가받은 근해어업이 폐업되었을 것
 - 다. 남북자가 납북된 날부터 5년 이상이 지났을 것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이하 “특수임무유공자”라 한다)의 가족(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선정한 대표자 1명을 말한다)에게 그 특수임무유공자가 허가받았던 근해어업과 같은 종류의 근해어업을 허가하는 경우
 - 가. 특수임무유공자가 어선을 사용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하거나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던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되었을 것
 - 나. 특수임무유공자가 사용한 어선이 폐선되거나 행방불명된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하였을 것
 - 다. 특수임무유공자가 허가받은 근해어업이 폐업되었을 것
 - 라. 특수임무유공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날부터 5년 이상이 지났을 것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 또는 어업조정(어선감척 등 어업구조조정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어업경영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해어업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32조(어업협정 등의 시행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한이나 금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9.>

1. 특정해역에서의 조업의 제한이나 금지

2. 어종별 총어획량과 어획시기의 제한이나 금지
3. 어획물과 그 제품을 운반, 양륙(선박으로부터 수산물 및 화물 등을 육상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옮겨 싣는 것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4. 외국의 관할 수역(국제기구에서 정하는 수역을 포함한다)에서의 조업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
5.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어업자에 대한 어업의 제한이나 금지
6. 어업에 관한 민간 차원의 협력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
7.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미국 지역에 수출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수산물에 대한 미국 수출의 제한이나 금지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7호에 따른 미국 수출 제한 또는 금지 대상 수산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수출확인증명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여금 발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1. 9.>

③ 제1항제7호에 따른 수산물의 미국 수출 제한 또는 금지나 제2항에 따른 수출확인증명서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24. 1. 9.>

제33조(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유통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1. 품목별 포장 및 용기의 규격과 재질
2. 제1호 외의 포장 및 용기 사용의 제한
3. 포장 및 용기의 규격과 재질에 관한 검사
4. 포장 및 용기의 사용 또는 판매의 제한

제34조(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법 제55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거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산물산지위판장 중 일부를 포획·채취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의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의 명칭 및 관리자
2.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의 소재지, 규모 및 시설 명세

제35조(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 지정의 취소) ① 시·도지사는 법 제5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정된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거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양륙장소 또는 매매

장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양륙하거나 매매한 실적이 없는 경우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6조(조업수역의 조정신청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조업수역의 조정을 신청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업수역의 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어업조정요청 사유서
 2. 해당 수면의 위치와 조정구역도
 3. 해당 수면의 어업실태조사서
 4. 분쟁 당사자 간의 협의결과에 관한 서류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관계 광역시·도·특별자치도 간에 또는 관계 시·군·자치구 간에 협의회를 구성하여 조업수역의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를 거쳐 해당 조업수역을 조정할 수 있다.
1. 해양수산부장관: 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2. 시·도지사: 법 제95조에 따른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제37조(어선의 선복량 제한)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한 선복량(船腹量)의 한계는 별표 6과 같다.

- ②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개조하거나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이미 허가받은 어선의 선복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이미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복량보다 개조 또는 대체하는 어선의 선복량이 증가하는 경우에 그 어선의 개조 또는 대체로 증가하는 선복량만큼 같은 종류의 어업허가를 받은 다른 어선을 폐선하여 별표 6에 따른 선복량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있는 경우
 2. 같은 종류의 어업허가를 받은 두 척 이상의 어선(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의 선복량의 합계보다 개조 또는 대체하는 어선의 선복량의 합계가 증가하는 경우에 그 어선의 개조 또는 대체로 증가하는 선복량의 합계만큼 같은 종류의 어업허가를 받은 다른 어선을 폐선하여 별표 6에 따른 선복량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있는 경우

3. 별표 6에 따른 선복량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잠수기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복량을 늘리는 경우
4.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총톤수 3톤 미만의 어선을 총톤수 3톤까지 선복량을 늘리거나 이미 같은 종류의 어업허가를 받은 총톤수 3톤 이내의 어선으로 대체하는 경우
5. 별표 6에 따른 선복량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2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패류형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복량을 늘리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어선이 두 종류 이상의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패류형망어업 외의 다른 어업은 폐업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개조하거나 새로운 어선을 건조하여 대체하는 경우 어선의 선복량의 증가 여부의 판정에 대해서는 「어선법」 제8조제3항 전단에 따른 오차허용범위를 적용한다. 이 경우 오차허용범위를 적용하여 산정되는 어선의 선복량은 별표 6에 따른 선복량의 한계를 초과할 수 없다.

제38조(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규모、형태、재질、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②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및 금지기간은 별표 7과 같다.
- ③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그물코 규격의 제한은 별표 8과 같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어업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어구의 규모、형태、재질、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이하 “어구의 규모등”이라 한다)의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해양수산부장관: 근해어업
2. 시、도지사: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제39조(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자 등에 대한 어구의 규모등 제한) ① 법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어업 종류별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범위는 별표 9와 같다.

- ② 시、도지사는 법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어업 종류별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범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해야 한다.
 1. 법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어업 종류별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내용
 2. 제1호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에 대한 제한 내용을 적용받는 어업자 또는 어업인의 명단과 해당 어선의 명칭
 3. 제2호에 따른 어업자 또는 어업인과 해당 어선이 법 제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에 대한 제한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내용
 4. 그 밖에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명단이 고시된 어업자 또는 어업인과 해당 어선이 법 제 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어업자 또는 어업인의 명단과 해당 어선의 명칭을 고시해야 한다.

제40조(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국립수산물과학원을 말한다.

제41조(유어장의 지정 등)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이란 제23조제 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을 말한다.

제41조의2(어구·시설물의 보관 및 처리) ① 행정관청은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어구·시설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그 어구·시설물을 보관하고, 어구·시설물의 보관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어구·시설물을 보관한 경우 보관 장소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행정관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같은 항에 따라 작성한 보관대장을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행정관청은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어구·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일간신문, 관보·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시 공고해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보·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고할 수 있다.

④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어구·시설물을 보관할 경우 닻아 없어지거나 변질 또는 파손 등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어구·시설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금 보관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어구·시설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쟁입찰로 해야 한다.

1. 경쟁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적 가치가 희소한 경우 등 경쟁입찰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6. 4. 21.]

제41조의3(어구·시설물의 반환 및 귀속) ① 행정관청은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어구·시설물(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매각 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반환신청서를 받은 후 반환 신청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어구·시설물을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어구·시설물의 철거·운반·보관·매각 등에 든 비용을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 어구·시설물을 반환받을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 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어구·시설물은 공고를 한 행정관청이

해양수산부장관인 경우에는 국고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귀속한다.

[본조신설 2026. 4. 21.]

제42조(표지의 설치)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어장 및 어선의 표지 설치명령을 받은 어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어장의 기점, 어장구역 및 어선·어구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 중 어장의 기점 및 어장구역에 관한 표지의 규격·형태·설치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어선 및 어구에 관한 표지의 규격·형태·설치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3조(어업인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 행정관청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어업인·어획물운반업자·어획물운반업종사자 또는 수산물가공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어업인·어획물운반업자·어획물운반업종사자 또는 수산물가공업자에 대한 교육
2. 수산시설물, 어획물운반업시설물 및 수산물가공업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지도
3. 수산물의 유통체계에 대한 지도
4. 어선의 해상안전조업 및 어업질서 유지에 대한 지도
5. 고용조건 개선에 대한 지도
6. 수산 분야 학교의 교사 및 학생의 실습을 위한 승선 등에 관한 협조 요청
7. 수산에 관한 국외취업 및 국외훈련에 대한 조정·지도
8. 해외어장 개발에 대한 지도
9. 외국으로부터 해외수역에서 조업허가를 받으려는 어업인에 대한 조정·지도

제44조(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 ① 어업감독 공무원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선(停船)이나 회항(回航)을 명할 수 있다.

1.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신호기 엘(L)의 게양
2.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사이렌, 뱃고동, 그 밖의 음향신호에 의한 엘(L)의 신호(단음 1회, 장음 1회, 단음 2회를 7초 간격으로 계속하는 신호)
3.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투광기에 의한 엘(L)의 신호(단광 1회, 장광 1회, 단광 2회를 7초 간격으로 계속하는 신호)
4. 마이크로폰 또는 육성(肉聲)

② 제1항에 따른 어업감독에 사용되는 선박에는 다른 어선이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이거나 깃발을 달아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장음” 또는 “장광”이란 3초 동안 계속 소리를 울리거나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하며, “단음” 또는 “단광”이란 1초 동안 소리를 울리거나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표지 또는 깃발의 종류·형태 및 그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5조(어업감독 공무원의 자격 등) ① 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수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
2. 수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6장 어구의 관리 등

제46조(어구실명제 실시 의무자) 법 제7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1조제1항제11호·제12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근해자망어업·근해안강망어업 또는 근해통발어업
2. 제22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연안개량안강망어업·연안통발어업 또는 연안자망어업
3. 제2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실뱀장어안강망어업

제46조의2(어구관리기록부의 확인·점검자) 법 제7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
2.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6. 4. 21.]

제47조(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의 지정 등) ① 행정관청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지정하려는 수거 해역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 및 수산자원 등의 현황
2. 지정하려는 수거 해역에 설치된 어구가 수산자원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3. 지정하려는 수거 해역에서의 어업 및 양식업 등의 운영 실태

② 행정관청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어구 수거 해역에서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어구 수거를 명하거나 어업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어구 수거 명령 또는 어업 제한 사유
2. 어구 수거 해역의 범위·면적 및 어구 수거 기간
3. 어업 제한 해역의 범위·면적 및 어업 제한 기간
4. 그 밖에 어구 수거 명령 또는 어업 제한에 필요한 사항

제48조(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 등의 비용 부담) ① 행정관청은 법 제78조제3항 본문에 따라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폐어구의 소유자: 해당 폐어구의 수거·처리 및 보관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00
2. 유실어구의 소유자: 해당 유실어구의 수거·처리 및 보관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50
- ② 법 제7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폐어구 또는 유실어구가 발생한 경우
 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로 인하여 폐어구 또는 유실어구가 발생한 경우
 3. 인명 또는 어선의 구조, 해양오염 등의 발생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폐어구 또는 유실어구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폐어구 또는 유실어구의 발생에 어구 소유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제49조(폐어구 수거·처리 사업 지원 등) ① 행정관청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폐어구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어업인이 수거한 폐어구의 구매
2. 수거한 폐어구의 재활용
- ② 행정관청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폐어구를 수거·처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폐어구 수거 장비의 개선
 2. 폐어구의 보관 및 처리 시설의 개선
 3. 그 밖에 행정관청이 폐어구의 수거 및 처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9조의2(어구보증금 부과 대상인 어구·부표의 범위) 법 제81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부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구·부표(이하 “어구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 12. 23.>

1. 제21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근해장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및 같은 항 제17호에 따른 근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2.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안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3. 그 밖에 회수 촉진이 필요한 어구등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구등
- [본조신설 2024. 1. 9.]

제49조의3(어구등 반환의 예외 사유 등) ① 법 제8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어구등을 분실한 경우를 말한다.

- ②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이하 “어구보증금관리센터”라 한다)는 법 제8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어구등을 반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구보증금 환급 신청을 받아 어구등의 반환 없이 어구보증금을 해당 어구등을 구입한 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 9.]

제49조의4(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대한 지원 범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어구보증금관리센터가 수행하는 어구등의 회수율 제고사업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 12. 30.>

②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제1항에 따른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 9.]

제7장 수산업의 육성

제50조(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자의 요건 등) ① 법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를 준수할 것
2. 「어선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3.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조업실적 보고체계에 따라 조업실적을 보고할 것
4. 그 밖에 어선안전 및 조업감시를 위한 시스템의 구비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법 제8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구역
2.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체장(體長) 또는 체중

제51조(시·도지사의 이행의무사항) 법 제87조제1항에서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어획량을 제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이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안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
2. 「수산자원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 및 평가계획을 시행할 것
3.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수립한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준수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설정·관리할 것

제8장 보상·보조 및 재결

제52조(보상의 청구)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그 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 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 면허·허가·신고 번호 또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이전명령이나 제거명령을 받은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주소·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 처분사항과 그 날짜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명세 및 산출방법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으면 그 내용을 조사·검토한 후 그에 대한 의견서를 해당 보상신청자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③ 수익자에는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면허·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에 대하여 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을 요청했거나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않도록 요청한 자가 포함된다.

제53조(보상금액 등의 결정과 통지) ① 행정관청은 제52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으면 법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액과 부담금액(수익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0 제4호나목에 따라 수산 관련 전문조사·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손실액의 산출을 위하여 용역조사를 하는 기간은 해당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보상금액과 부담금액을 결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상신청자, 수익자 및 어업권을 등록한 권리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어업권을 등록한 권리자의 주소와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어업의 표시

3. 처분일

4. 보상금액 또는 부담금액

제54조(보상금의 지급 등) ① 제53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은 그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처분을 한 행정관청(다른 행정관청이 보상의 원인이 된 처분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요청한 행정관청을 말한다)이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되, 보상을 받을 자가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제52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한 신청자별로 지급해야 한다

- ④ 시설물 등에 대한 보상을 신청받은 행정관청은 그 시설물 등의 인도 또는 이전이 끝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보상금의 지급을 미룰 수 있다.
- ⑤ 시설물 등을 인도받거나 이전받은 수익자가 그 시설물 등을 해체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에 그 해체 또는 폐기의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뢰받은 행정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대행해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행정관청이 시설물 등의 해체 또는 폐기를 대행하는 데 드는 경비는 그 시설물 등의 해체 또는 폐기를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

제55조(손실액의 산출) 법 제88조에 따른 보상을 위한 손실액의 산출방법, 산출기준 및 손실액 산출기관 등은 별표 10과 같다.

제56조(재결신청) ① 법 제91조 또는 제92조에 따라 입어 또는 어장구역 등에 대한 재결(裁決)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경위를 적은 협의서(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이해관계인 수에 해당하는 제1호에 따른 협의서 사본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결신청서를 받으면 협의서 사본을 이해관계인에게 보내 그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③ 이해관계인이 협의서 사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7조(재결)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6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를 받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결해야 한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결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결을 하면 신청인에게는 재결서를 보내고, 이해관계인에게는 재결서 등본을 보내야 한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석한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8조(보조 대상사업) 법 제93조에 따른 자금의 보조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과학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2. 수산경영 지원사업
3. 수산단체의 육성
4. 수산물 처리·가공·유통 및 시장개척사업
5. 수산종자의 생산기반이 되는 시설의 개량사업

6. 어선 및 어구의 개량·도입 및 보급
7. 어업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사업
8. 어업통신 및 안전조업을 위한 지원사업
9. 어장 개발을 위한 시험어업
10. 어항시설사업
11. 연안자원 조성사업 및 어장환경 개선·관리사업
12.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에 따른 민간 어업 협력사업
13. 질병검사 등 수산생물의 질병관리를 위한 사업
14. 수산자원의 남획 방지 등 수산자원을 적정하게 관리·이용하기 위한 사업
15. 친환경어구의 사용 장려 등 친환경어업을 위한 사업
16. 갯벌을 이용한 어업의 육성·관리사업
17. 수산정보화사업

제9장 수산조정위원회

제59조(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4. 30.>

1. 국립수산물과학원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립수산물과학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 1의2.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한국수산자원공단”이라 한다)의 임원 중에서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 1의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이사 또는 집행간부 중에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수산업 또는 수산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7명 이내
3. 시·도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어업인 중에서 시·도지사가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하는 사람 11명 이내

② 시·도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와 위원이 호선(互選)으로 선출한 사람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4. 30.>

1. 국립수산물과학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2명
2. 후계어업경영인 대표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2명

3. 수산업 또는 수산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2명
4. 수산업계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6명
5. 관할 지구별수협 조합장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4조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의 조합장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각 2명. 다만, 업종별수협의 조합장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수산업계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③ 시·군·구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과 위원이 호선으로 선출한 사람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 소속 4급 또는 5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할 지구별수협의 조합장 및 업종별수협의 조합장(업종별수협의 조합장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이나 어업인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각 1명
 2. 국립수산물과학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립수산물과학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후계어업경영인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4. 어촌계장 중에서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5. 법에 따른 면허·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6.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2.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
 3. 제3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
- ⑤ 중앙위원회, 시·도위원회 및 시·군·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명과 1명 이상의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해양수산부, 시·도 또는 시·군·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지명한다.
- ⑥ 각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0조(합동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96조 제4항에 따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에 중앙합동수산조정위원회(이하 “중앙합동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시·도에 지역합동수산조정위원회(이하 “지역합동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중앙합동위원회 및 지역합동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③ 중앙합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수산자원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지도 관련 업무담당 이사 또는 집행간부 1명
 2.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6명
 3. 직접적인 당사자로 인정되는 어업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4명. 이 경우 어업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별로 같은 수의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 ④ 지역합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도의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행정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시·도의 수산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7명
 2. 직접적인 당사자로 인정되는 어업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 또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 이 경우 어업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별로 같은 수의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 ⑤ 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어업조정이 끝나는 기간까지로 한다.
- ⑥ 중앙합동위원회 및 지역합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명과 1명 이상의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해양수산부 또는 시·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각각 지명한다.

제61조(어업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97조제5항에 따른 어업조정위원회(이하 “어업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 구역별로 설치한다.

1. 동해어업관리단의 관할 구역: 동해어업조정위원회
 2. 서해어업관리단의 관할 구역: 서해어업조정위원회
 3. 남해어업관리단의 관할 구역: 남해어업조정위원회
- ② 동해어업조정위원회, 서해어업조정위원회 및 남해어업조정위원회는 각각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동해어업조정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동해어업관리단장과 동해어업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 ④ 서해어업조정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서해어업관리단장과 서해어업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 ⑤ 남해어업조정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남해어업관리단장과 남해어업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 ⑥ 동해어업조정위원회, 서해어업조정위원회 및 남해어업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양수산부 소속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국립수산물과학원 소속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립수산물과학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관계 시·도에서 수산 업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6명 이내
 4. 어업과 관련된 단체에 소속된 사람 또는 어업·수산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3명 이내
- ⑦ 제6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⑧ 동해어업조정위원회, 서해어업조정위원회 및 남해어업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업조정위원회별로 각각 간사 1명과 1명 이상의 서기를 둔다.
1. 동해어업조정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동해어업조정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지명하는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2. 서해어업조정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서해어업조정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지명하는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3. 남해어업조정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남해어업조정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지명하는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제62조(위원의 지명 철회 등) 제59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위원을 지명, 추천 또는 위촉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 또는 추천을 철회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 4. 30.>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중앙위원회, 시·도위원회, 시·군·구위원회, 중앙합동위원회, 지역합동위원회 및 어업조정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업에 관한 조정·보상·재결 등에 관한 심의(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각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조정등에서 회피(回避)해야 하고,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조정등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64조(위원장의 직무)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각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5조(회의)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조정등의 내용 및 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66조(수당 등) 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67조(운영세칙)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장 보칙

제68조(서류 송달의 공시방법)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69조(과징금 부과기준 등) ①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받은 어업 등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1.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형트롤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44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10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
2.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어장구역을 벗어나 어구를 설치한 경우
3. 제23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구역 외의 수역에서 조업을 한 경우
4. 제31조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
5. 제38조제2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및 금지기간을 위반한 경우
6. 「수산자원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어획물 등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7.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같은 영 별표 1 제1호, 같은 표 제3호나목2) 및 같은 표 제4호사목에 한정한다]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
8.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
9.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어선의 사용제한을 위반한 경우
10. 같은 위반행위로 그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 이전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행정처분(어업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11. 같은 위반행위로 그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 이전 최근 2년 이내에 60일 이상의 행정처분(어업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제70조(과징금의 부과절차 등) ① 행정관청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적어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71조에 따른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관청에 알려야 한다.

제71조(과징금의 수납기관)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제72조(과징금의 용도) ① 행정관청은 법 제99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1. 어업지도선 및 경비함정의 건조 및 수리에 필요한 경비
2.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지도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
3. 어업지도선 및 경비함정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지도·단속·수사 담당공무원의 근무수당 및 수사비
4. 어업지도선 및 경비함정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의 구입 경비
5. 불법어업지도·단속기관에 대한 보조금
6.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몰수한 어획물·제품·어선·어구·폭발물 또는 유독물의 관리 및 처리 비용

② 행정관청은 과징금의 세부용도 및 사용비율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1. 제1항제3호에 따른 근무수당 및 수사비: 징수한 과징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상
2. 제1항제5호에 따른 보조금 중 다른 행정기관에서 불법어업을 단속하여 관할 행정기관에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단속기관에 지급하는 보조금: 징수한 과징금 총액의 100분의 30

제73조(포상의 방법 및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0조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표창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표창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수여기준 및 포상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4조(권한의 위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의 허가
2.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의 휴업신고 또는 재개업 신고(근해어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제한·정지,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의 제한(근해어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4.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4조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어업허가의 취소(근해어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5. 법 제103조제2호에 따른 청문(근해어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시·도지사는 그 처리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6. 4. 21.>

1. 법 제76조의2제2항에 따른 유실어구 신고의 접수
2. 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른 어구관리기록부의 확인을 위한 조치
3. 법 제112조제4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장에게 위탁한다.<신설 2024. 1. 9., 2026. 4. 21.>

1.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2.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폐어구 수거 및 처리 사업에 관한 업무
3.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어구·시설물 철거의 집행 업무를 「어촌·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장에게 위탁한다.<신설 2026. 4. 21.>

[제목개정 2024. 1. 9.]

제7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관청(해당 권한이나 업무가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어구보증금관리센터(제20호의2부터 제20호의4까지만 해당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1. 9.>

1. 법 제5조에 따른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한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공동신청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에 관한 사무
4. 법 제9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부여 및 연장에 관한 사무
6. 법 제15조에 따른 한정어업면허에 관한 사무(법 제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권의 이전·분할 또는 변경에 관한 사무
8. 법 제20조에 따른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27조에 따른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금지에 관한 사무(법 제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법 제29조에 따른 휴업 신고, 재개업 신고 및 어업권 포기의 신고에 관한 사무(법 제50조 및 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1. 법 제33조에 따른 공익의 필요에 의한 어업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등에 관한 사무(법 제50조 및 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2. 법 제3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취소에 관한 사무(법 제50조 및 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3. 법 제40조에 따른 어업허가에 관한 사무(법 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4. 법 제45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15. 법 제46조에 따른 시험어업에 관한 사무
16. 법 제48조에 따른 어업신고에 관한 사무
17. 법 제51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18. 법 제52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제한·정지 또는 취소에 관한 사무(법 제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9. 법 제68조에 따른 해기사면허의 취소·정지 또는 해기사에 대한 견책 요구에 관한 사무
20. 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무
- 20의2.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 20의3.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어구보증금의 환급에 관한 업무
- 20의4.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취급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업무
21. 법 제88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22. 법 제91조에 따른 입어에 관한 재결에 관한 사무
23. 법 제92조에 따른 어장의 구역, 어업권의 범위, 보호구역 또는 어업의 방법에 관한 재결에 관한 사무
24. 법 제100조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무

제7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8조 및 별표 4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 및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장 벌칙

제77조(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법 제10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일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말한다.

제7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24. 1. 9.>

부칙 <제33225호, 2023. 1.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수산조정위원회 등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 제73조·제74조 및 제74조의2에 따라 지명되거나 추천 또는 위촉된 수산조정위원회·합동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어업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각각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명되거나 추천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추천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보는 위원

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정치망어업의 종류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5241호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1996년 12월 31일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241호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면허를 받은 정치망어업은 그 면허면적에 따라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형정치망어업·중형정치망어업 또는 소형정치망어업으로 본다.

제5조(해조채취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3910호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3년 10월 20일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910호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해조채취어업을 허가받은 어업과 그 어선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2127호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3910호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 이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연안형망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170호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1999년 3월 3일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170호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연안형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해서는 해당 어선에 한정하여 대통령령 제22127호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6170호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 이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어업의 종류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2127호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0년 4월 23일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27호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어업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어업으로 본다.

| 형망어업 | 패류형망어업 |
|------------------|--------|
| 호망어업·송망어업·각망어업 | 송망류어업 |
| 주목망어업·장망어업·낭장망어업 | 장망류어업 |

제8조(근해어업의 허가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353호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3년 2월 13일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353호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그 허가어선을 대체하여 허가받은 어선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24353호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353호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9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수산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4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5호”로 한다.
- ②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7조”로 한다.
- ③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나목1)”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4호나목1)”로 한다.
- 제33조제3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 ④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제1항제7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7호·제10호 및 제19호에 따른 양식·입어 및 유어(遊漁)”를 “「수산업법」 제2조제8호·제17호에 따른 입어·유어(遊漁)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으로 한다.
- 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제103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제42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를 “「수산업법」 제7조, 제40조, 제43조 및 제48조에 따른 어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88조”로 한다.
- ⑥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7조제4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같은 법 제41조”를 “같은 법 제40조”로, “같은 법 제47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한다.
- ⑦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 ⑧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81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88조제2항”으로 한다.
- 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4호 중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및 제47조”를 “「수산업법」 제7조, 제40조 및 제48조”로 한다.
- 제20조의5제2항제6호 중 “「수산업법」 제65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62조제1항”으로 한다.
- ⑩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수산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유어(遊漁)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

⑪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중 “「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 입어(入漁)、유어(遊漁) 또는 양식”을 “「수산업법」 제2조제8호、제17호에 따른 입어、유어(遊漁)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으로 한다.

⑫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8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91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99조제1항”으로, “「수산업법 시행령」 제79조 및 별표 5”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69조 및 별표 11”로 한다.

⑬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7호 중 “「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 입어(入漁)、유어(遊漁) 또는 양식”을 “「수산업법」 제2조제8호、제17호에 따른 입어(入漁)、유어(遊漁)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으로 한다.

⑭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7호 본문 중 “「수산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양식,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입어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유어”를 “「수산업법」 제2조제8호、제17호에 따른 입어、유어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으로 한다.

⑮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2 비고 제1호가목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1호나목 중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8제1항제11호가목 중 “「수산업법」”을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1*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제4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2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별표 3의3 비고 제5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2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5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2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제1호마목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2)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의 비고 제2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조업구역”을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의 조업구역”으로 한다.

2!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61조제1항제1호”를 “「수산업법」 제55조제1항제1호”로 한다.

2#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41조 또는 제42조”를 “「수산업법」 제40조 또는 제43조”로 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9조제3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2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근해안강망어업(어선의 규모가 30톤 이상인 어업으로 한정한다)

2% 수산업,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10호 중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를 “「수산업법」 제7조, 제40조”로 한다.

2^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3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제3항”을 “「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수산업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별표 14의 구분란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어업신고를 한 자”를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 같

은 법 제43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어업신고를 한 자”로 한다.

2&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가목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13조”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95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본문 중 “「수산업법」 제29조”를 “「수산업법」 제28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13조”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2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8조제2항 단서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17조”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14조”로 한다.

제49조 전단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및 별표 4”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및 별표 10”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 ”법 제8조 “ ”를 “ ”법 제7조 “ ”로, “ ”법 제30조 “ ”를 “ ”법 제29조 “ ”로, “ ”법 제34조 “ ”를 “ ”법 제33조 “ ”로, “ ”법 제35조 “ ”를 “ ”법 제34조 “ ”로, “ ”법 제41조 “ ”를 “ ”법 제40조 “ ”로, “ ”법 제49조제1항 및 제3항 “ ”을 “ ”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 “ ”으로, “ ”법 제72조 “ ”를 “ ”법 제69조 “ ”로, “ ”법 제81조 “ ”를 “ ”법 제88조 “ ”로 한다.

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수산업법」 제45조”를 “「수산업법」 제46조”로 한다.

2(어업·양식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수산업법」 제7조”를 “「수산업법」 제6조”로 한다.

제39조제3호 중 “「수산업법」 제31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30조제2항”으로, 같은 조 제4호 중 “「수산업법」 제34조”를 “「수산업법」 제33조”로, 같은 조 제5호 중 “「수산업법」 제35조”를 “「수산업법」 제34조”로, 같은 조 제10호 중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39조제3항”으로, 같은 조 제11호 중 “「수산업법」 제40조제4항”을 “「수산업법」 제39조제4항”으로 한다.

제43조제1호 중 “「수산업법」 제31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30조제2항”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수산업법」 제34조”를 “「수산업법」 제33조”로, 같은 조 제3호 중 “「수산업법」 제35조”를 “「수산업법」 제34조”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85조”를 “「수산업법」 제92조”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산업법」 제85조”를 “「수산업법」 제92조”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31조제2항, 제3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6호(같은 법 제34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수산업법」 제30조제2항, 제34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6호(같은 법 제33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56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3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산업법」 제40조제4항”을 “「수산업법」 제39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40조제4항”을 “「수산업법」 제39조제4항”으로 한다.

제61조 전단 중 “「수산업법」 제85조”를 “「수산업법」 제92조”로 한다.

제66조제3항 전단 중 “「수산업법」 제85조”를 “「수산업법」 제92조”로 한다.

3)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8조、제41조、제45조”를 “「수산업법」 제7조、제40조、제46조”로 한다.

제4조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수산업법」 제69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지명된 자”를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사람”으로 한다.

3!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3@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40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45조”를 “「수산업법」 제46조”로 한다.

3#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5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양식,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입어 및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유어(遊漁)”를 “「수산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입어, 같은 조 제17호에 따른 유어(遊漁)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으로 한다.

3\$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가목”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7조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나목1) 및 4)”를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4호나목1) 및 4)”로 한다.

3%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3항제7호 본문 중 “같은 법 제65조”를 “같은 법 제62조”로 한다.

별표 1의4 비고 제1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로 한다.

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를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수산업법」 제4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수산업법」 제40조”로 한다.

3&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1 비고 제2호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수산업법」 제40조”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종>의 제53호 본문 및 같은 표 <제2종>의 제53호 본문 중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및 제47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7조, 제40조 및 제48조”로 하고, 같은 표 <제3종>의 제54호 본문 중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및 제47조”를 “「수산업법」 제7조, 제40조 및 제48조”로, 제183호 중 “「수산업법」 제57조”를 “「수산업법」 제51조”로 하며, 같은 표 <제4종>의 제53호 본문 중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및 제47조”를 “「수산업법」 제7조, 제40조 및 제48조”로, 제94호 중 “「수산업법」 제65조”를 “「수산업법」 제62조”로 한다.

3(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0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을 “「수산업법」 제6조에 따른 어업면허 및 어업허가”로 하고, 같은 표 제61호 및 제62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을 각각 “「수산업법」 제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74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30조제5항”을 “「수산업법」 제2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75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41조, 제42조 및 제47조”를 “「수산업법」 제40조, 제43조 및 제48조”로 하며, 같은 표 제76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77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78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81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41조제4항제1호”를 “「수산업법」 제40조제4항제1호”로 하며, 같은 표 제82호 및 제83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42조제1항”을 각각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84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45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4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85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47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86호 및 제87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을 각각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88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48조제2항”을 “「

수산업법」 제4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89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48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4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90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92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93호 및 제94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68조제1항”을 각각 “「수산업법」 제6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95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81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8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96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84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9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97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85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92조제1항”으로 한다.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22호나목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1호, 제41조제1항 또는 제57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1호, 제40조제1항 또는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4!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1항제5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제19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8호·제17호”로 한다.

4@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제19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8호·제17호”로 한다.

4#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나. 「양식산업발전법」 제60조제1항
에 따른 양식산업단지 | 「양식산업발전법」 제60조제1항에 따
라 행정관청이 양식산업단지를 지정
하기 전 |
|-------------------------------------|--|

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를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으로 한다.

4%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한다.

별표 4 면허수면의 범위란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한다.

별표 15 제1호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란의 마목 본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어업”을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동양식업”으로 하고, 같은 란의 사목 단서 중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한다.

별표 15 제2호 라목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한다.

4&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양식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4*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7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같은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같은 법 제57조제1항”을 “같은 법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434호, 2023. 4. 25.>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4119호, 2024. 1. 9.>

이 영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76호, 2024. 4. 30.>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50호, 2024. 6. 4.>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 까지 생략

1[&]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항 제8호나목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1의 마을어업의 대상 지역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5 제21호의 조업구역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의 사용 금지구역란 및 같은 호 다목의 사용 금지구역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7 주2) 및 주10)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1* 부터4\$ 까지 생략

부칙 <제34947호, 2024. 10. 22.>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5089호, 2024. 12. 2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8호마목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1의 마을어업의 대상 지역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5 제19호의 조업구역란 및 같은 표 제21호의 조업구역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7 제1호나목의 금지기간란, 같은 호 라목의 금지기간란, 같은 호 마목의 금지기간란, 같은 표 제2호가목의 금지기간란, 같은 호 나목의 금지기간란, 같은 호 바목의 금지기간란 및 같은 표 제3호가목의 금지기간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의 부도 1 제1호 및 제2호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표의 부도 4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1^ 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35914호,2025. 12.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36호,2025. 12.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구보충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2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 및 대통령령 제 34119호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9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어구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출고하는 어구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948호,2025. 12. 30.>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8>까지 생략

<139>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4제1항 후단 중 “ 기획재정부장관 ” 을 “ 기획예산처장관 ” 으로 한다.

<140>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 <제36273호,2026. 4. 21.>

이 영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423호,2026. 6. 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4\$ 까지 생략

4%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8호마목 중 “ 전라남도 ” 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로 한다.

별표 1의 마을어업의 대상 지역란 중 “ 부산광역시 ” 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산광역시 ” 로,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 를 “ 전북특별자치도 ” 로 한다.

별표 5의 제20호 및 제21호의 조업구역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전라남도지사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전라남도 해역에서는 전라남도지사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역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전라남도지사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나목1)나), 같은 목 2)나), 같은 2)의 금지기간란, 같은 호 라목의 금지기간란, 사용 금지구역란 및 같은 표 마목의 금지기간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7 제2호가목의 금지기간란, 같은 호 나목2) 및 같은 목의 금지기간란, 같은 호 바목의 금지기간란 및 사용 금지구역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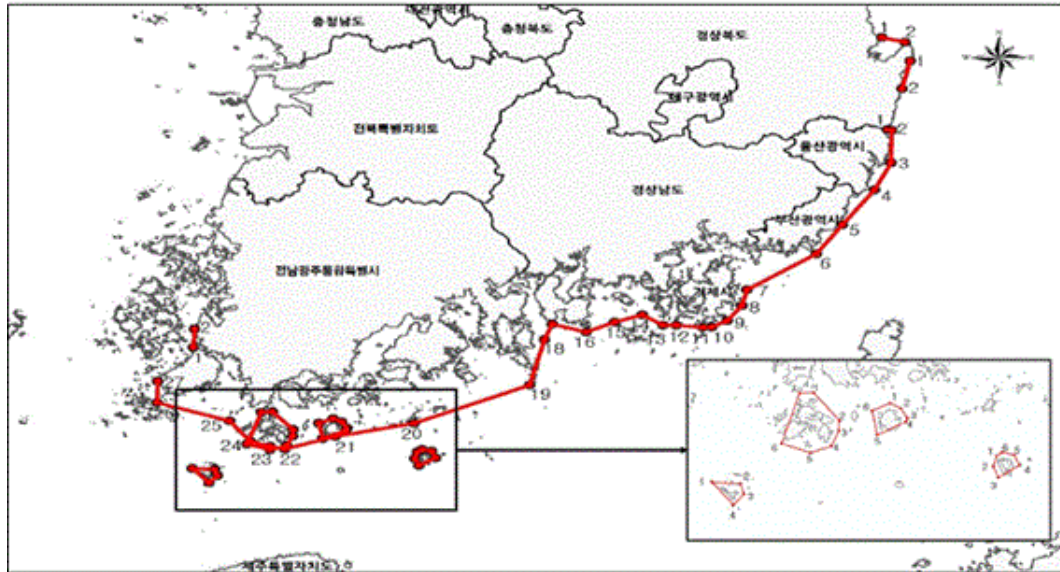
별표 7 제3호가목의 금지기간란, 같은 호 나목의 금지기간란 및 같은 호 다목의 사용 금지구역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7 주5) 및 주7)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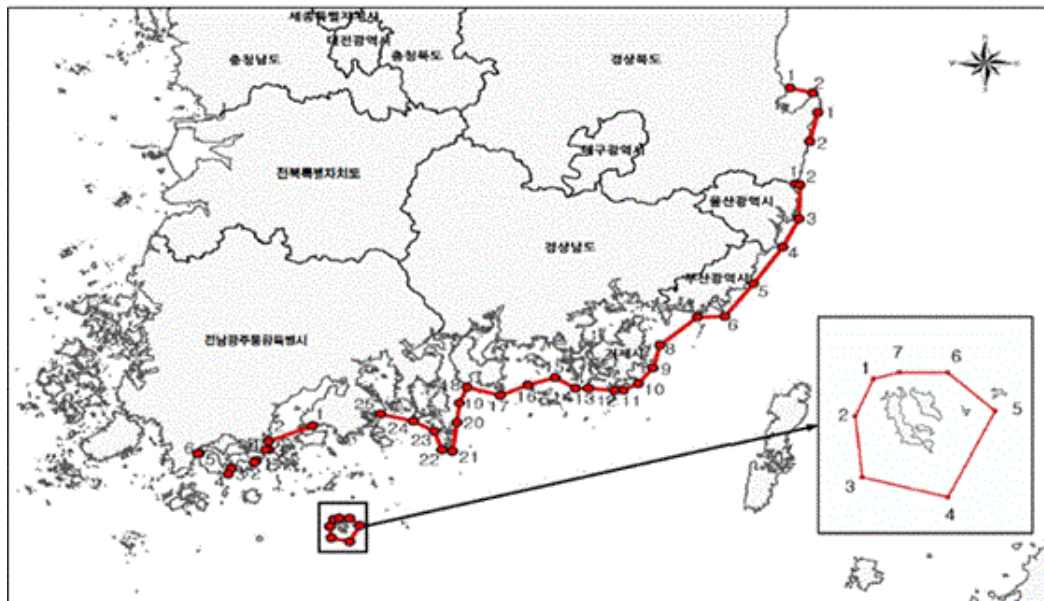
별표 7 부도 1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도 1]

1. 대형선망어업 및 소형선망어업의 멸치 포획금지구역도



2. 근해자망어업 및 연안자망어업의 멸치 포획금지구역도



별표 7 부도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도 4]



4^ 부터 <78>까지 생략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6. 23.>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제14조제2항 관련)

| 어업의
종류 | 대상 지역 |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 |
|-----------|---|--|
| 마을
어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충
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 마을어장 형망선, 형망어업 또
는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 |
| |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제주특
별자치도 | 마을어장 형망선, 자원관리채취
선, 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
이 허가된 어선 |

비고

1. “마을어장 형망선”이란 형망을 이용하는 동력어선을 말한다.
2. “자원관리채취선”이란 잠수기를 이용하는 어선을 말한다.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1. 9.>

어업별 어구의 규모·형태·재질·사용량 및 사용방법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 관련)

1. 일반사항

- 가. “어구”(漁具)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데에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 나. “어법”(漁法)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데에 사용되는 수단과 방법을 말하며, 탐어(探魚)와 집어(集魚) 및 어획의 과정을 포함한다.
- 다. “어구 겨냥도”란 어구의 모양이나 배치를 알기 쉽게 그린 기본적인 도면을 말한다.
- 라. “표준어구 구성도”란 어구를 제작하기 위하여 그린 기본적인 도면을 말한다.
- 마. “조업모식도”란 조업하는 방법을 정리·배열한 그림을 말한다.
- 바. “뜸” 또는 “부자”(浮子)란 물속에서 어구를 뜨게 하거나 그 형상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어구에 부착하는 물건을 말하며, 어구에 포함된다.
- 사. “발돌” 또는 “침자”(沈子)란 물속에서 어구를 가라앉게 하거나 그 형상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어구에 부착하는 물건을 말하며, 어구에 포함된다.
- 아. “투망”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해 주로 그물로 된 어구를 어선에서 물속에 투하하는 것을 말하고, “투승”이란 낚시나 줄을 투망하는 것을 말한다.
- 자. “曳망”(曳網)이란 물속에 투하된 어구를 어선이 끌고 가는 것을 말한다.
- 차. “양망”(揚網)이란 물속에 투하된 어구를 어선 위로 끌어 올리는 것을 말하고, “양승”이란 낚시나 줄을 양망하는 것을 말한다.
- 카. “부속선”이란 허가받은 어선의 어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허가받은 어선 외에 부가하여 허가받은 운반선, 가공선, 등선(燈船), 어로보조선을 말한다.
- 타. “경사로”란 저인망 조업에서 어구의 투망 또는 양망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선미(船尾) 쪽을 경사지도록 만든 시설을 말한다.

2. 근해어업의 어구의 규모·형태·재질·사용량 및 사용방법

가.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가-1 및 부도 가-2와 같다.
- 가) 날개그물(자루그물 입구 양쪽 옆판 쪽에 붙어 있는 그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자루그물(밑판, 등판, 양 옆판으로 구성된 그물을 말한다. 이

하 같다)로 구성된 어구

나) 전개판(자루그물 입구를 좌우로 벌어지도록 하는 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좌우 전개장치(자루그물 입구를 좌우로 벌어지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착하지 않은 어구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1)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가-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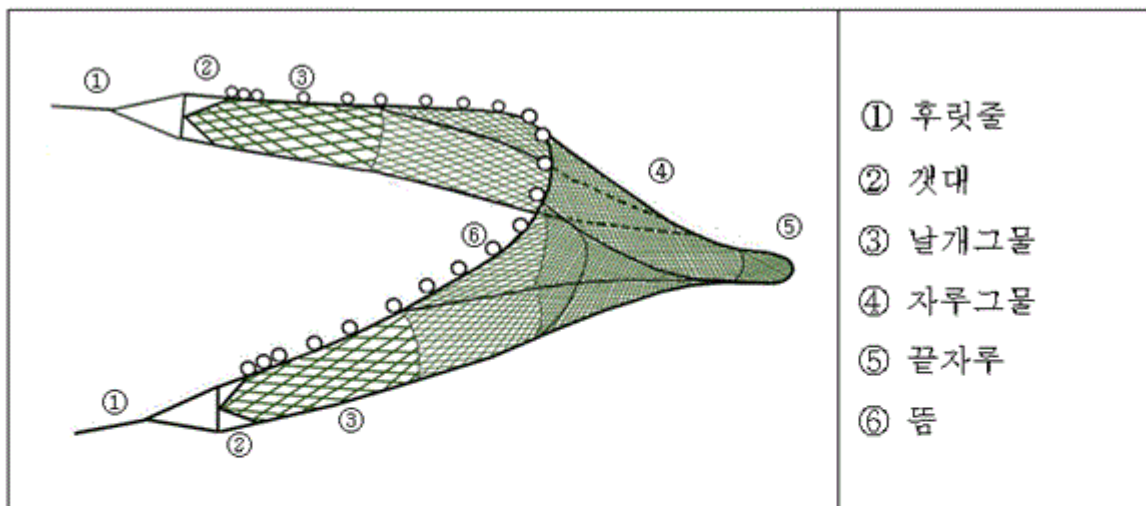
가) 한쪽 끝줄 끝에 달린 부표를 투하한 후 이를 기점으로 일정한 모양으로 끝줄, 후릿줄(그물과 끝줄 사이를 잇는 줄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물 및 다른 한쪽의 후릿줄, 끝줄 순서로 투망한 다음 부표를 인양하여 저층을 예망한다.

나) 예망 중 양쪽의 끝줄이 나란해지면 끝줄, 후릿줄, 그물 순서로 양망한다.

다) 어구의 투망 또는 양망을 위하여 경사로를 활용할 수 있다.

[부도 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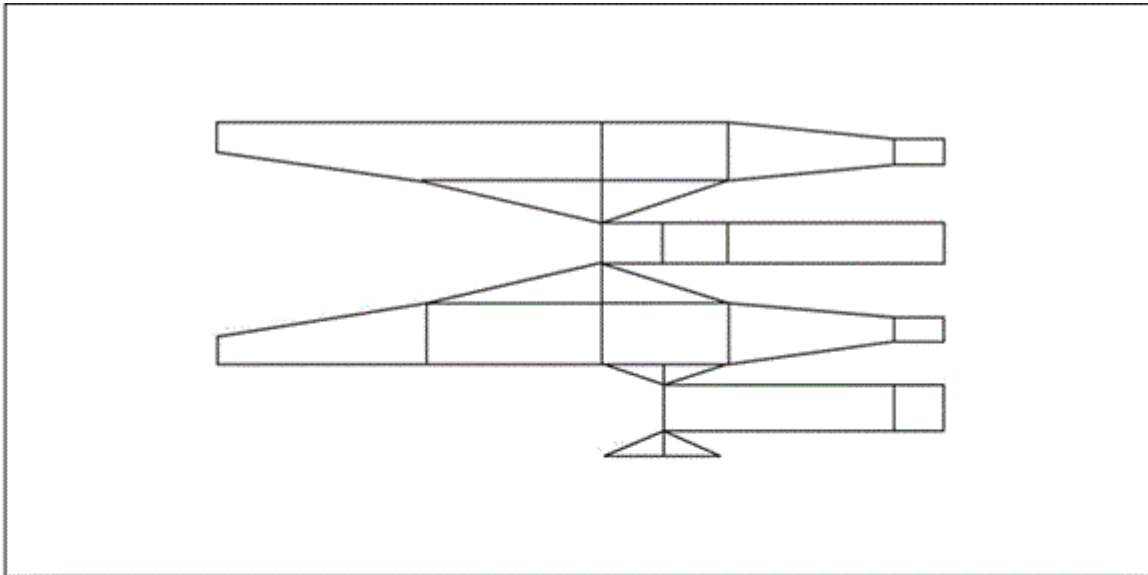
외끌이대형저인망 어구 겨냥도



비고: “끝자루”란 최종적으로 어획물을 모으는 그물 부분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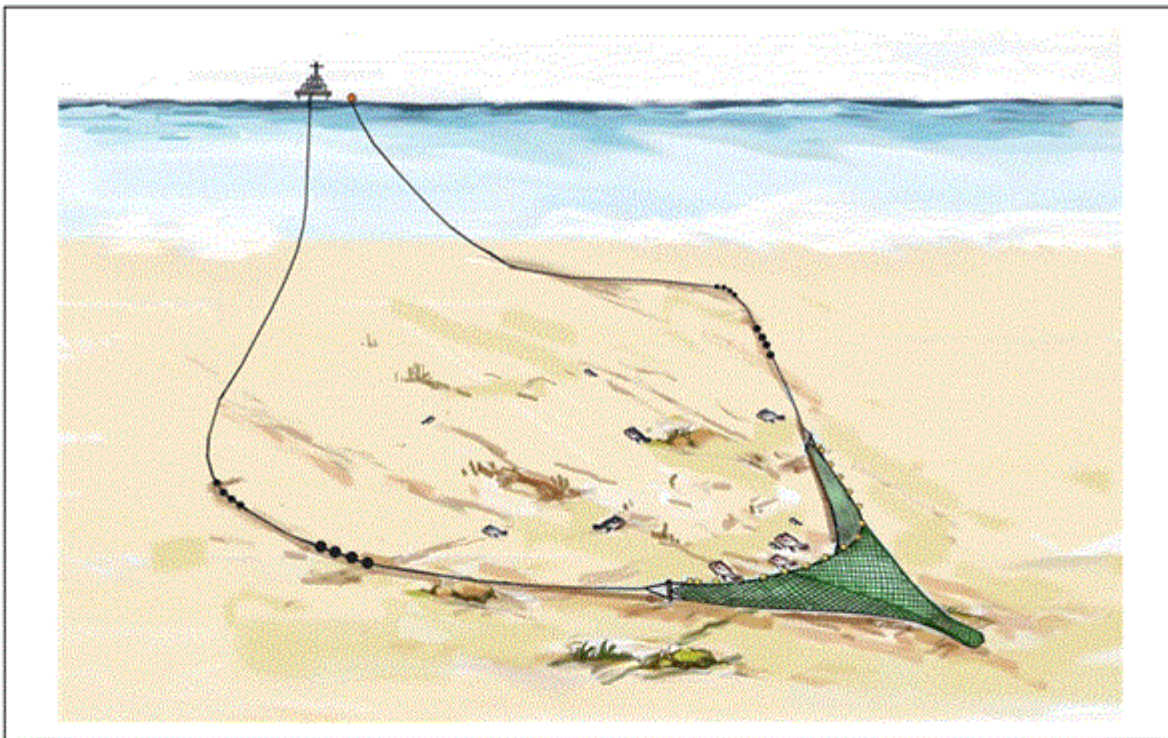
[부도 가-2]

외끌이대형저인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가-3]

외끌이대형저인망 조업모식도



나.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나-1 및 부도 나-2와 같다.

가)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나) 전개판 등 좌우 전개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어구

-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2척의 어선으로 1)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멸치는 제외한다)을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나-3과 같다.

가) 주선(主船: 그물을 투망·양망 및 예망하는 그물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선미에서 자루그물, 날개그물 순서로 투망하면 종선(從船: 조업 시 주선을 도와 예망하는 보조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한쪽 후릿줄의 끝을 주선에 넘겨주어 날개그물 끝에 연결하도록 하고, 연결이 끝나면 주선과 종선은 서로 사이가 벌어지도록 전진하면서 후릿줄과 끌줄을 내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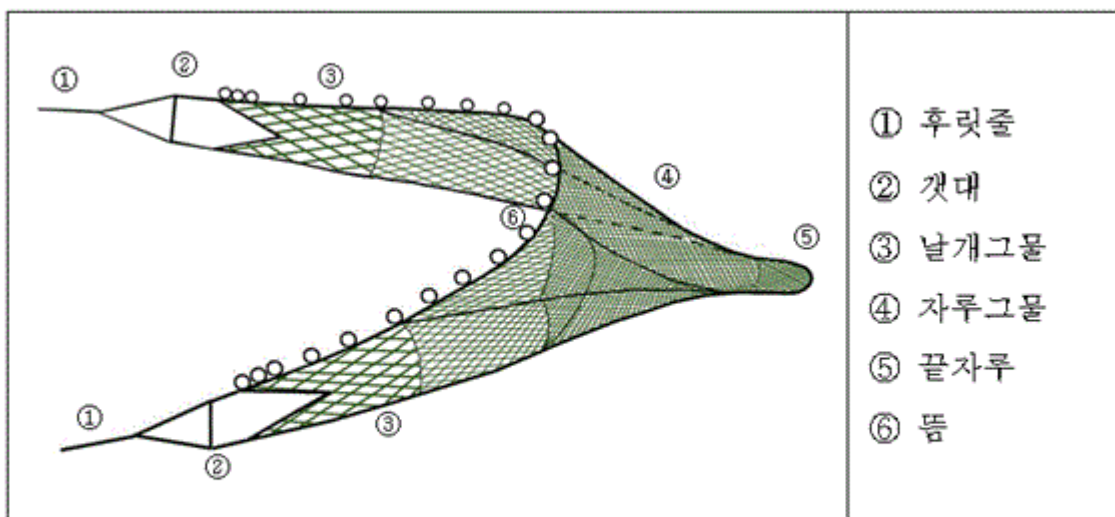
나) 투망이 완료되면 주선과 종선은 끌줄 1가닥씩을 잡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저층을 예망한다.

다) 예망이 완료되면 주선과 종선은 다시 접근하여 그물을 오므리고, 주선은 종선으로부터 그물의 다른 한쪽과 연결된 줄을 넘겨받아 그물을 양망한다.

라) 어구의 투망 또는 양망을 위하여 경사로를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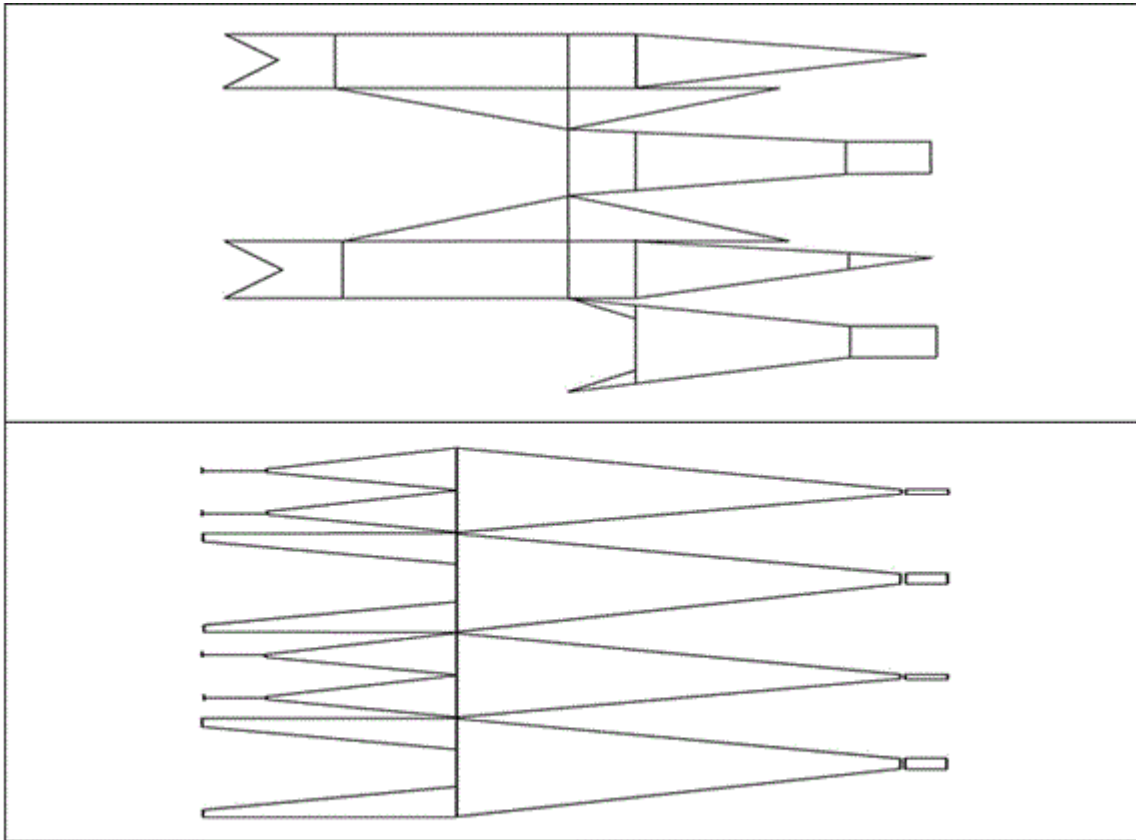
[부도 나-1]

쌍끌이대형저인망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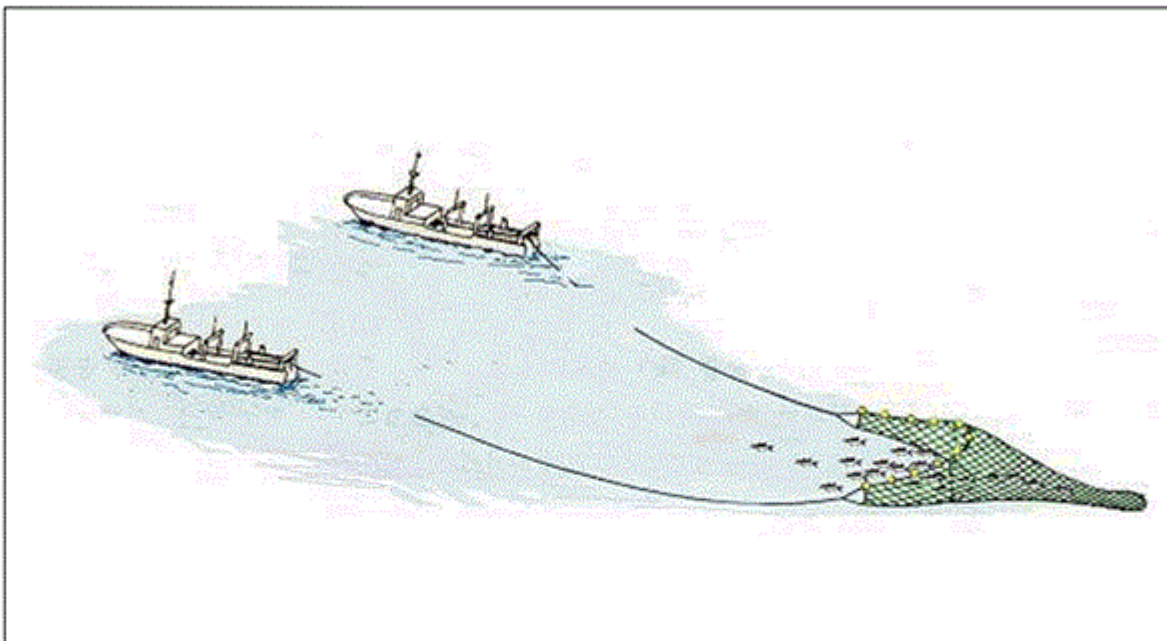
[부도 나-2]

쌍끌이대형저인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나-3]

쌍끌이대형저인망 조업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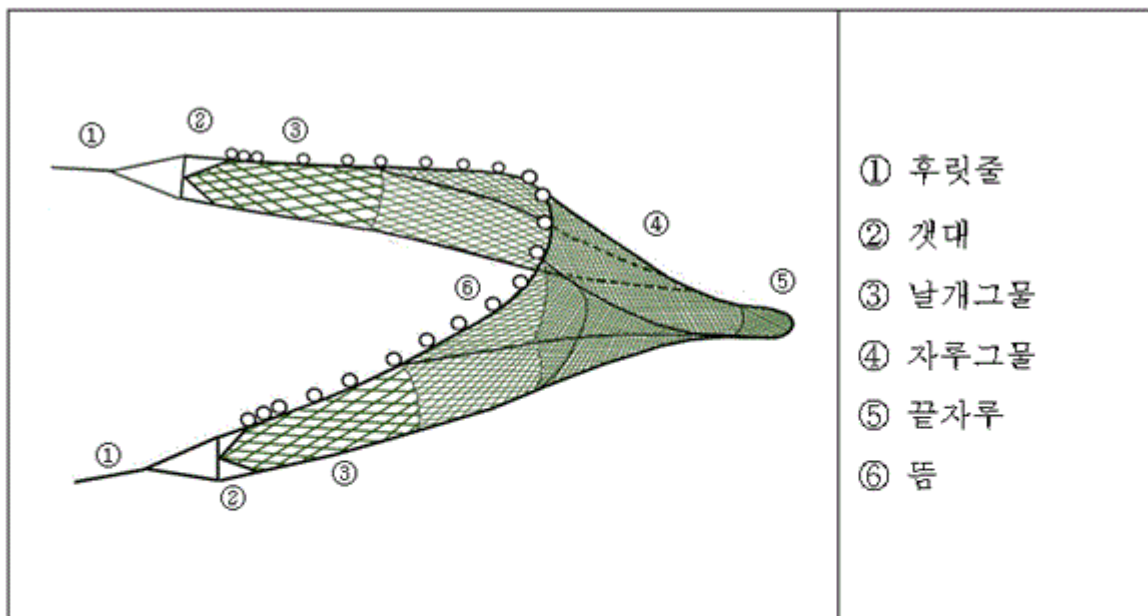
다.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다-1 및 부도 다-2와 같다.

- 가)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나) 전개판 등 좌우 전개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어구
-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1)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다-3과 같다.
- 가) 한쪽 끝줄 끝에 달린 부표를 투하한 후 이를 기점으로 일정한 모양으로 끝줄, 후릿줄, 그물 및 다른 한쪽의 후릿줄, 끝줄 순서로 투망한 다음 부표를 인양하여 저층을 예망한다.
 나) 예망 중 양쪽의 끝줄이 나란해지면 끝줄, 후릿줄, 그물 순서로 양망한다.
 다) 어구의 투망 또는 양망을 위하여 경사로를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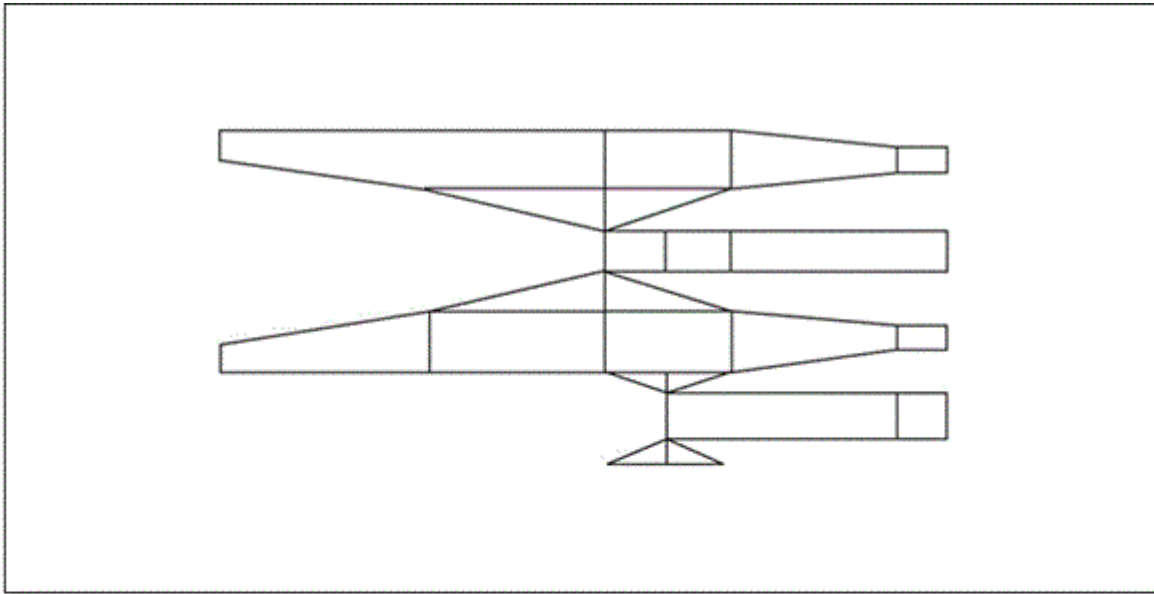
[부도 다-1]

동해구의끝이중형저인망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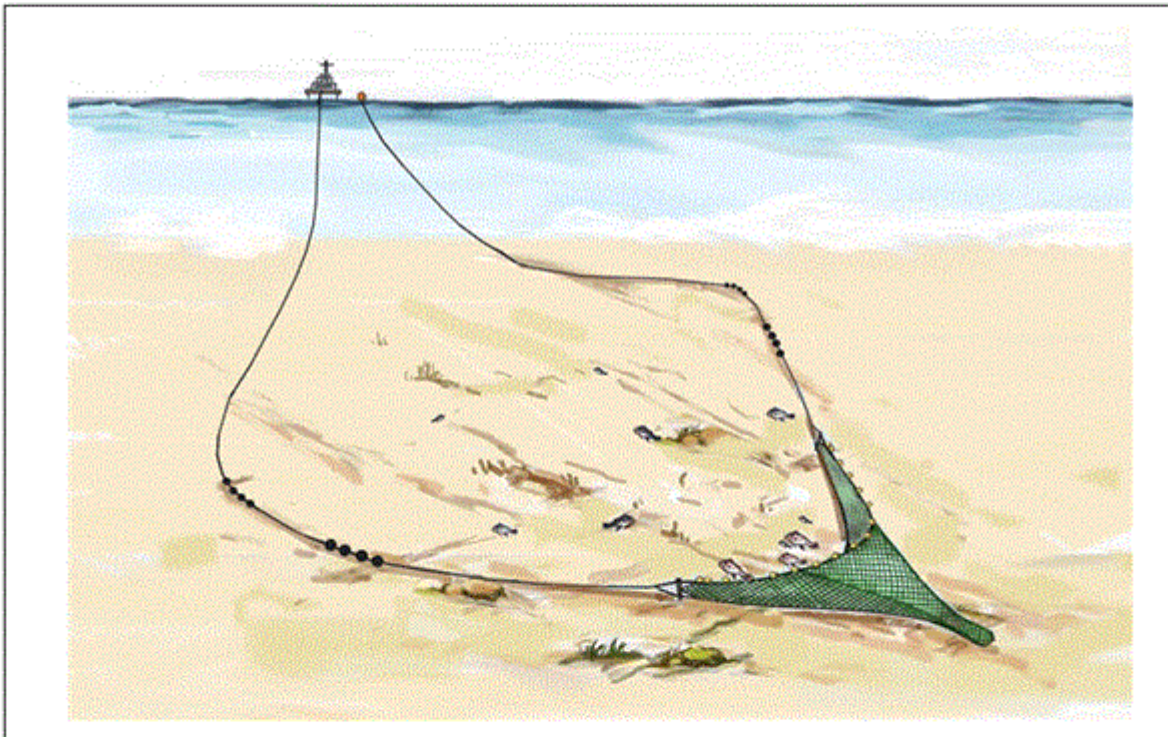
[부도 다-2]

동해구의끝이중형저인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다-3]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조업모식도



라.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라-1 및 부도 라-2와 같다.

가)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나) 전개판 등 좌우 전개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어구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1)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라-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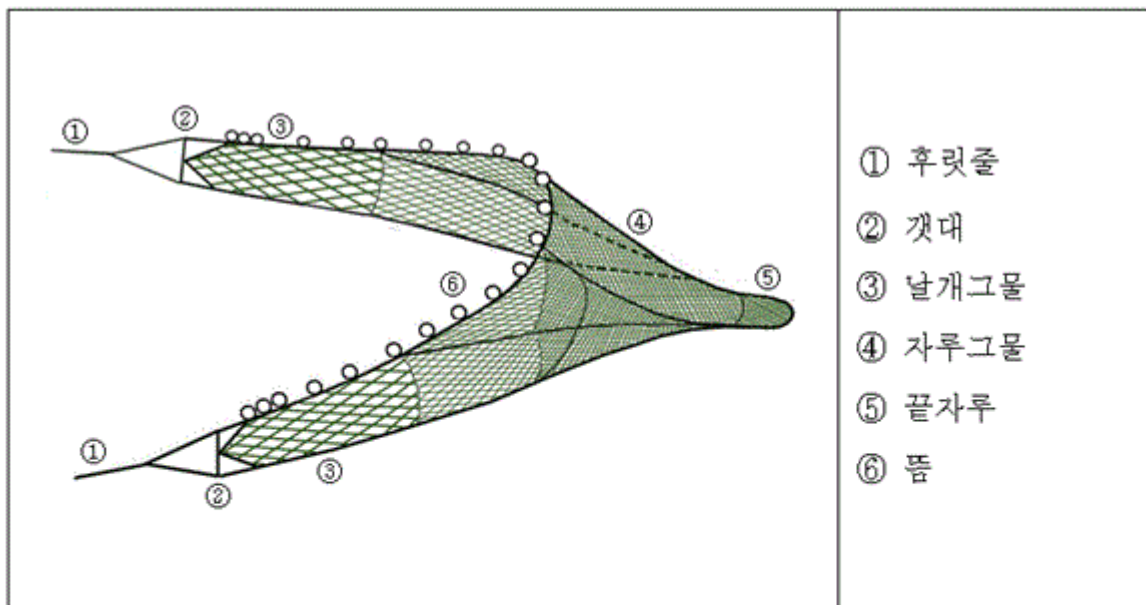
가) 한쪽 끝줄 끝에 달린 부표를 투하한 후, 이를 기점으로 일정한 모양으로 끝줄, 후릿줄, 그물 및 다른 한쪽의 후릿줄, 끝줄 순서로 투망한 다음 부표를 인양하여 저층을 예망한다.

나) 예망 중 양쪽의 끝줄이 나란해지면 끝줄, 후릿줄, 그물 순서로 양망한다.

다) 어구의 투망 또는 양망을 위하여 경사로를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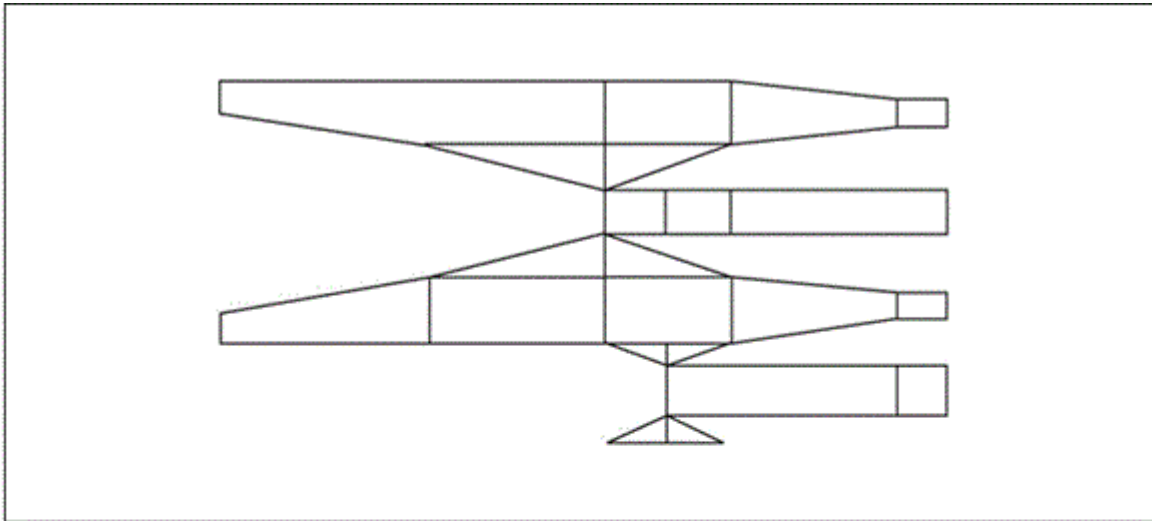
[부도 라-1]

서남해구외끝이중형저인망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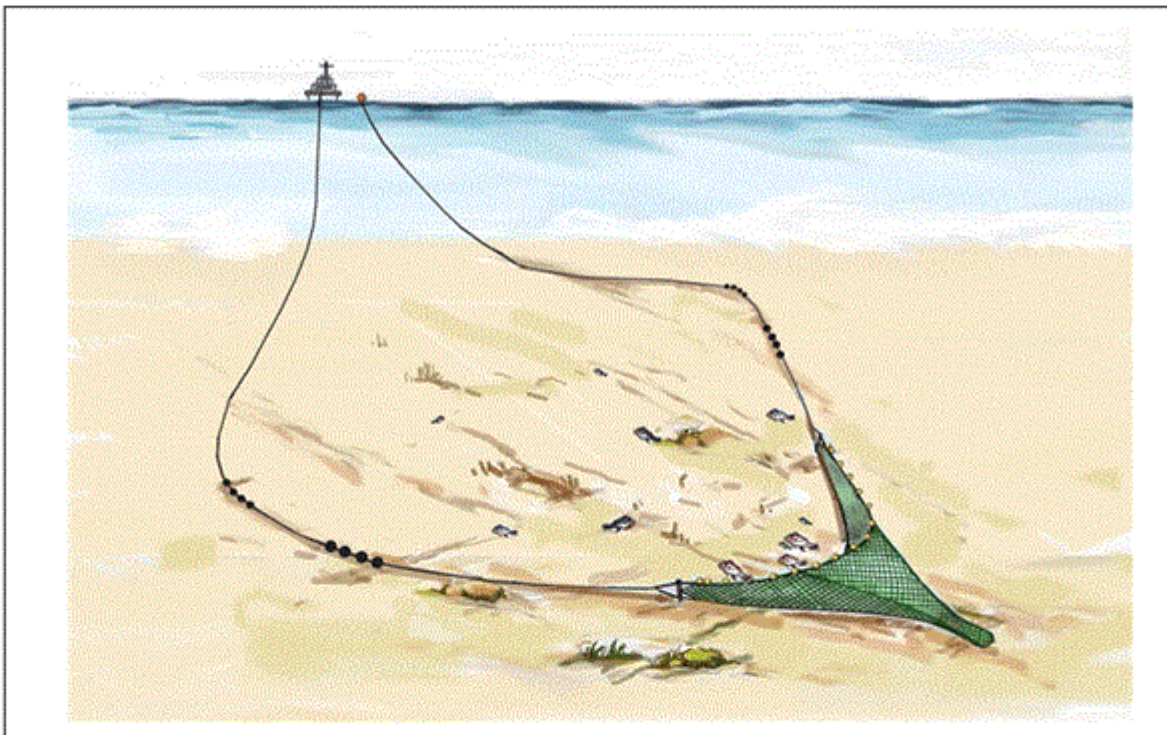
[부도 라-2]

서남해구외끝이중형저인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라-3]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조업모식도



마.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마-1 및 부도 마-2와 같다.
 - 가)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 나) 전개판 등 좌우 전개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어구
-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2척의 어선으로 1)에 적합한 어구 1통

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멸치는 제외한다)을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마-3과 같다.

가) 주선이 선미에서 자루그물, 날개그물 순서로 투망하면 종선은 한쪽 후릿줄의 끝을 주선에 넘겨주어 날개그물 끝에 연결하도록 하고, 연결이 끝나면 주선과 종선은 서로 사이가 벌어지도록 전진하면서 후릿줄과 끝줄을 내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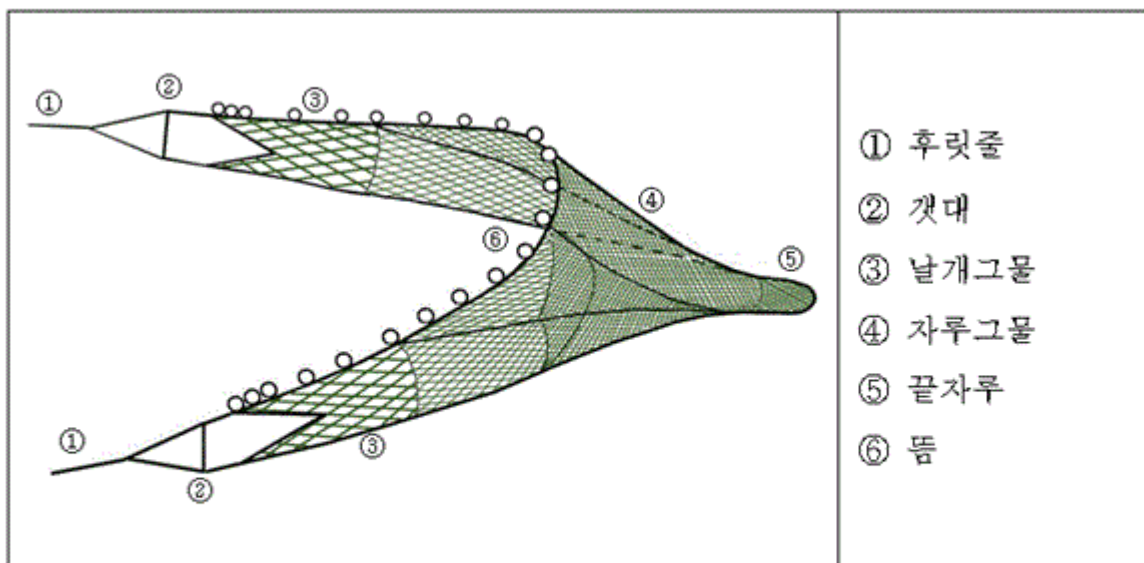
나) 투망이 완료되면 주선과 종선은 끝줄 1가닥씩을 잡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저층을 예망한다.

다) 예망이 완료되면 주선과 종선은 다시 접근하여 그물을 오므리고, 주선은 종선으로부터 그물의 다른 한쪽과 연결된 줄을 넘겨받아 그물을 양망한다.

라) 어구의 투망 또는 양망을 위하여 경사로를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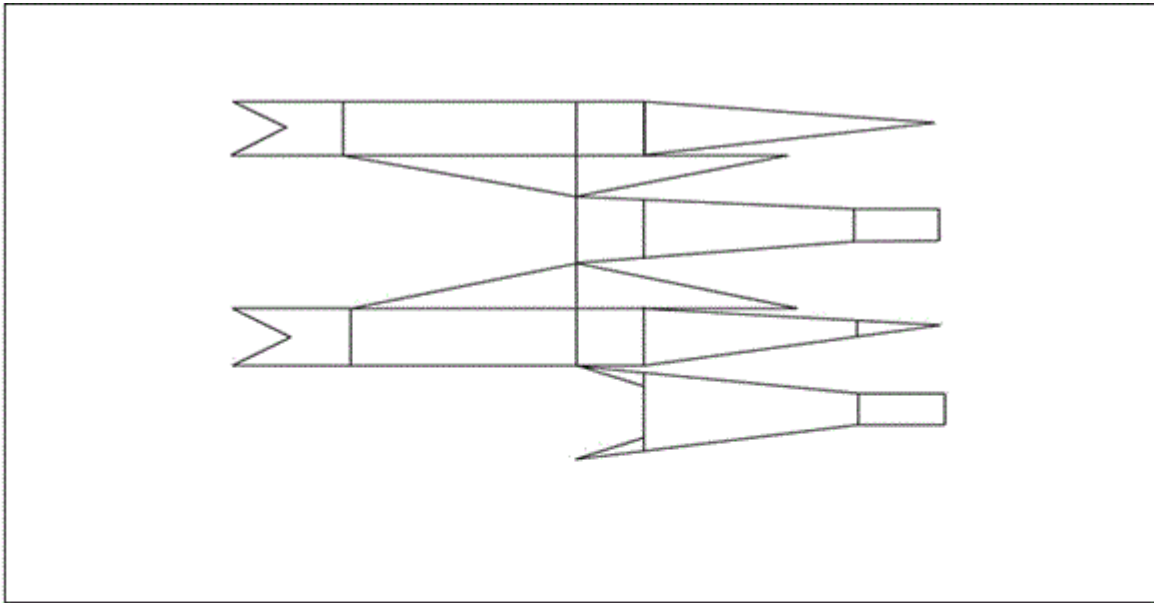
[부도 마-1]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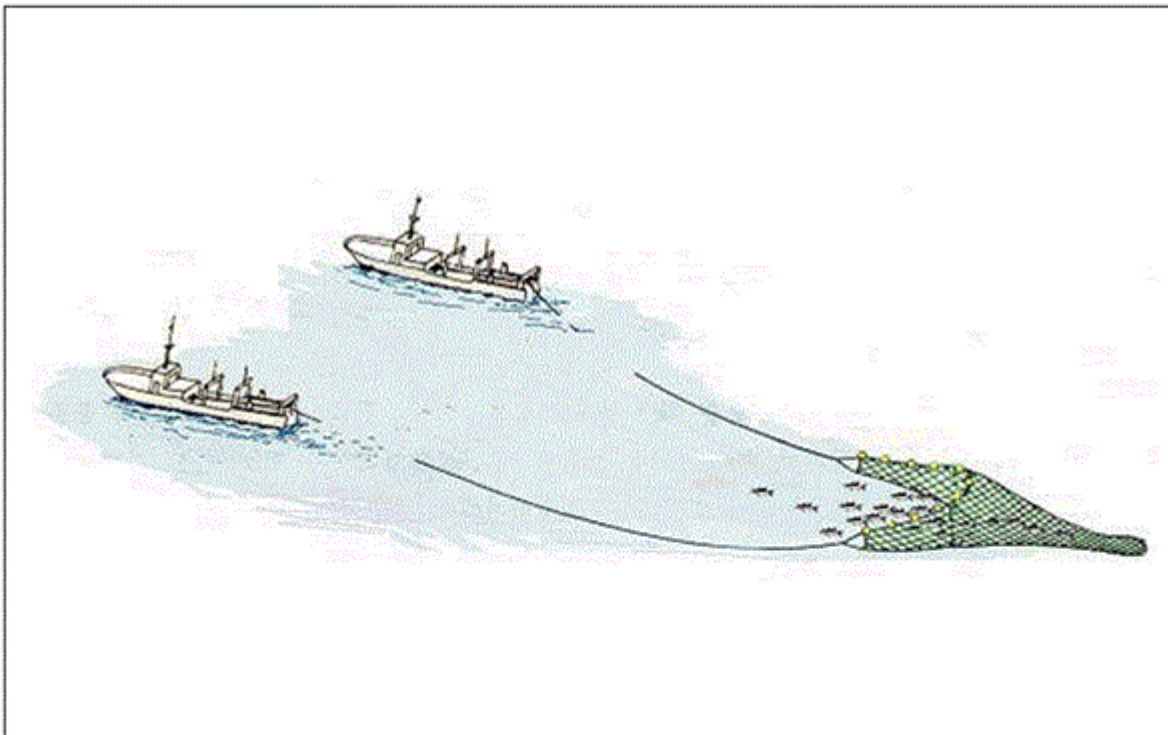
[부도 마-2]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마-3]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조업모식도



바. 대형트롤어업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바-1 및 부도 바-2와 같다.

가)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다만, 날개그물은 선택적으로 부착할 수 있다.

나) 전개판 등 좌우 전개장치를 부착한 어구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1)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바-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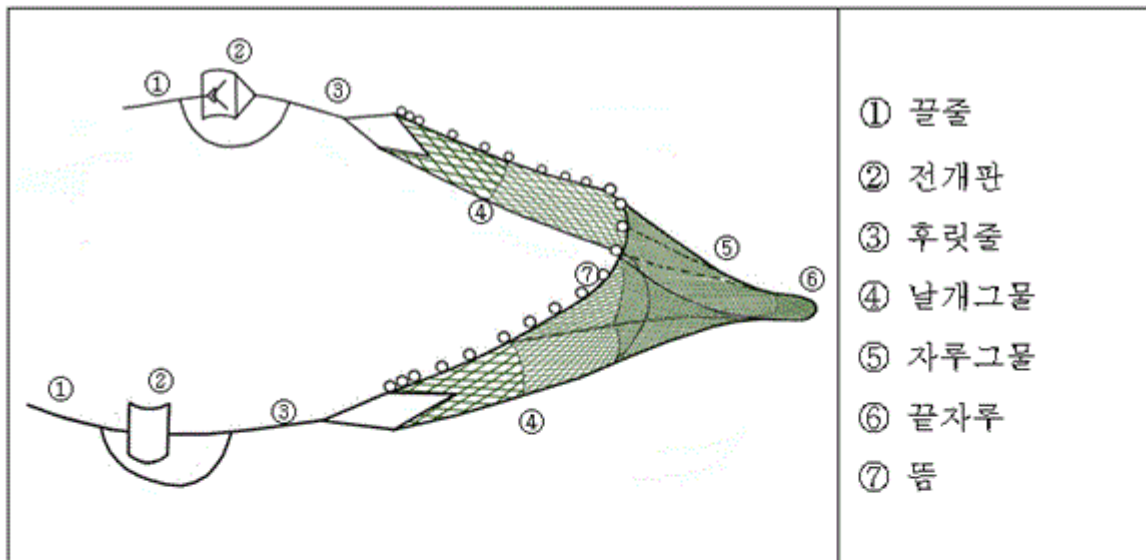
가) 자루그물과 날개그물, 후릿줄, 망구전개판, 끌줄 순서로 선미에서 투망한다.

나) 중충과 저충을 예망하며 예망이 완료되면 끌줄과 전개판, 후릿줄, 날개그물, 자루그물 순서로 양망한다.

다) 어구의 투망 또는 양망을 위하여 경사로를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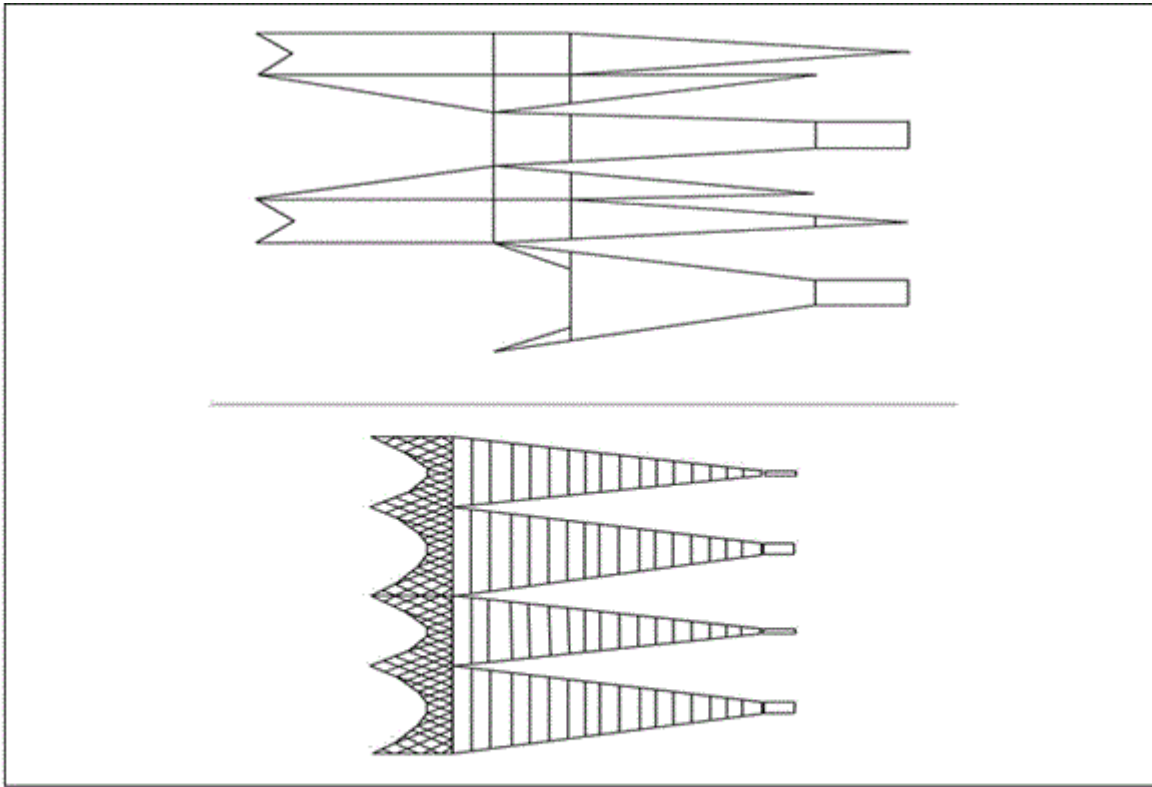
[부도 바-1]

대형트롤망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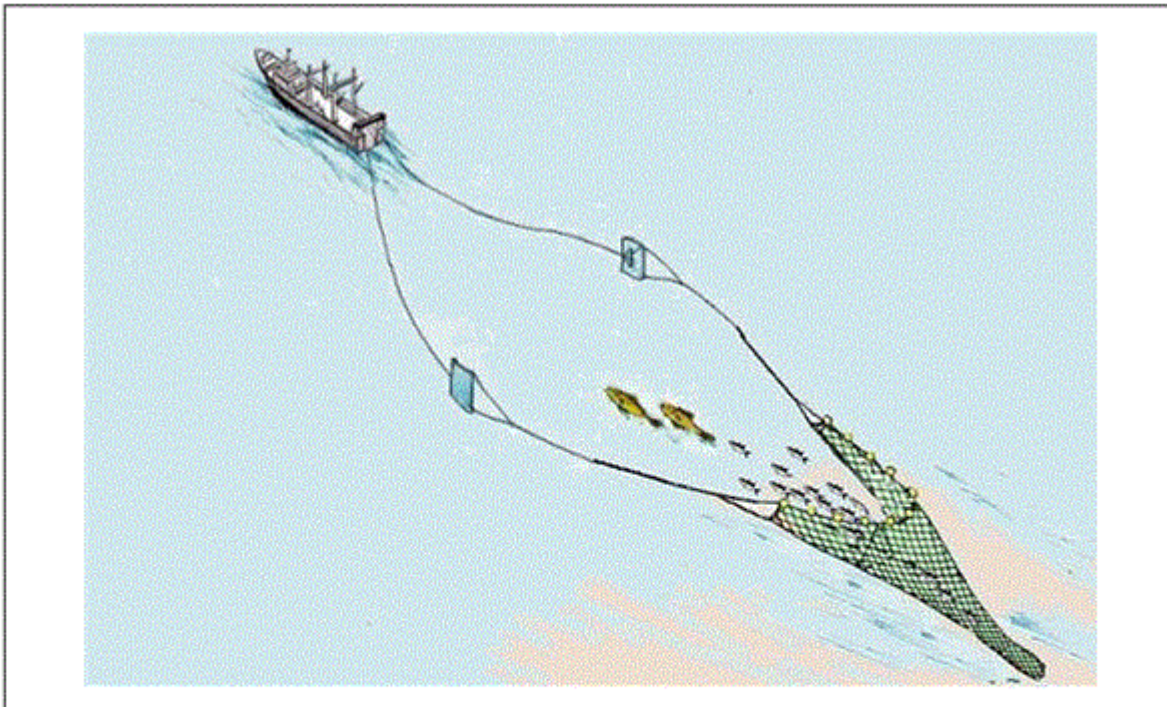
[부도 바-2]

대형트롤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바-3]

대형트롤망 조업모식도



사. 동해구중형트롤어업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사-1 및 부도 사-2와 같다.

가)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다만, 날개그물은 선택적으로 부

착할 수 있다.

나) 전개판 등 좌우 전개장치를 부착한 어구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1)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사-3과 같다.

가) 자루그물과 날개그물, 후릿줄, 망구전개판, 끌줄 순서로 허가조건에 따라 현측(舷側: 어선의 옆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선미에서 투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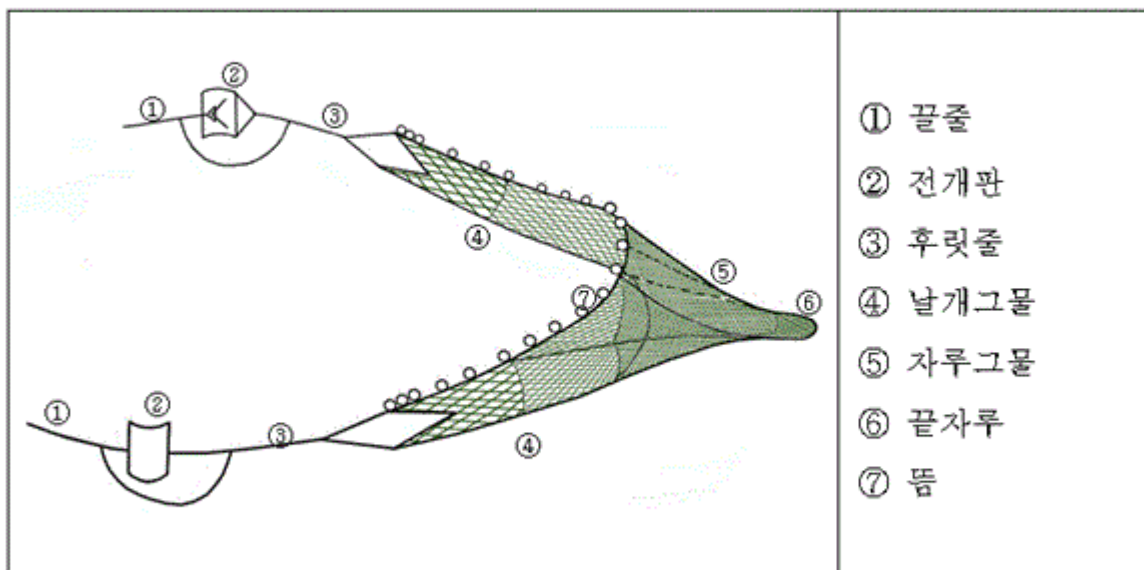
나) 중충과 저충을 예망하며 예망이 완료되면 끌줄과 망구전개판, 후릿줄, 날개그물, 자루그물 순서로 양망한다.

다) 어구를 현측에서 투망·양망하는 현측식과 선미에서 투망·양망하는 선미식으로 구분한다.

라) 어구의 투망 또는 양망을 위하여 경사로를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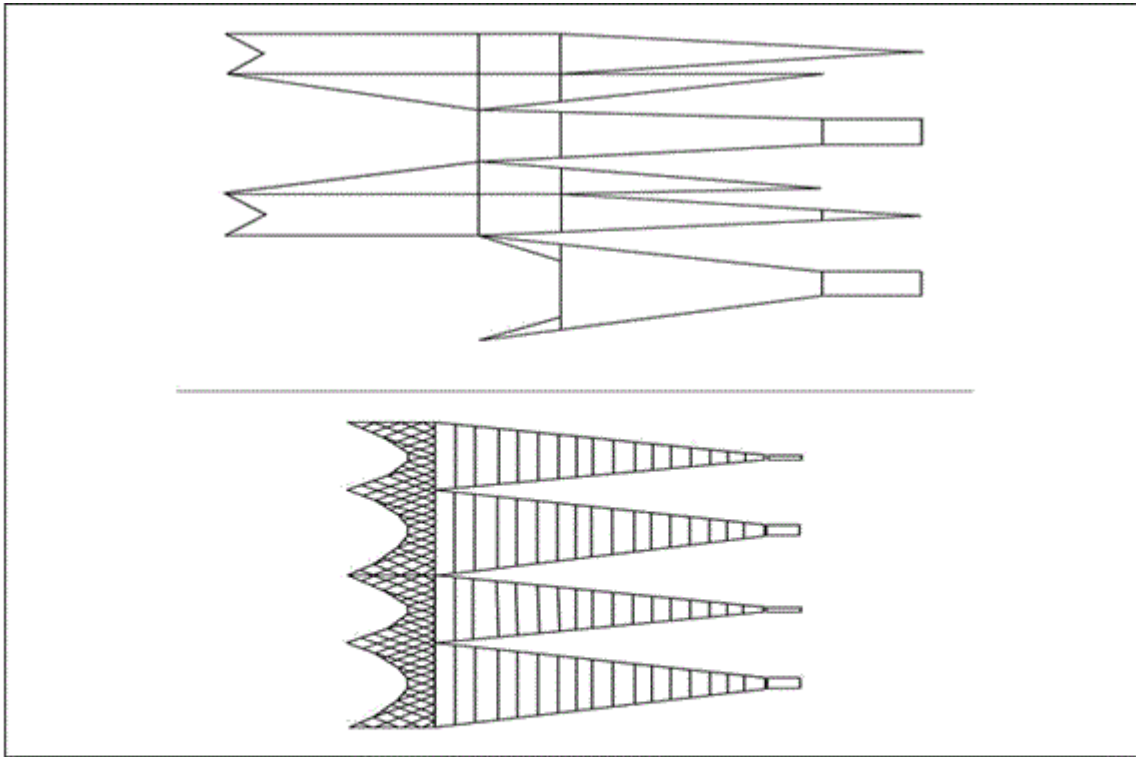
[부도 사-1]

동해구중형트롤망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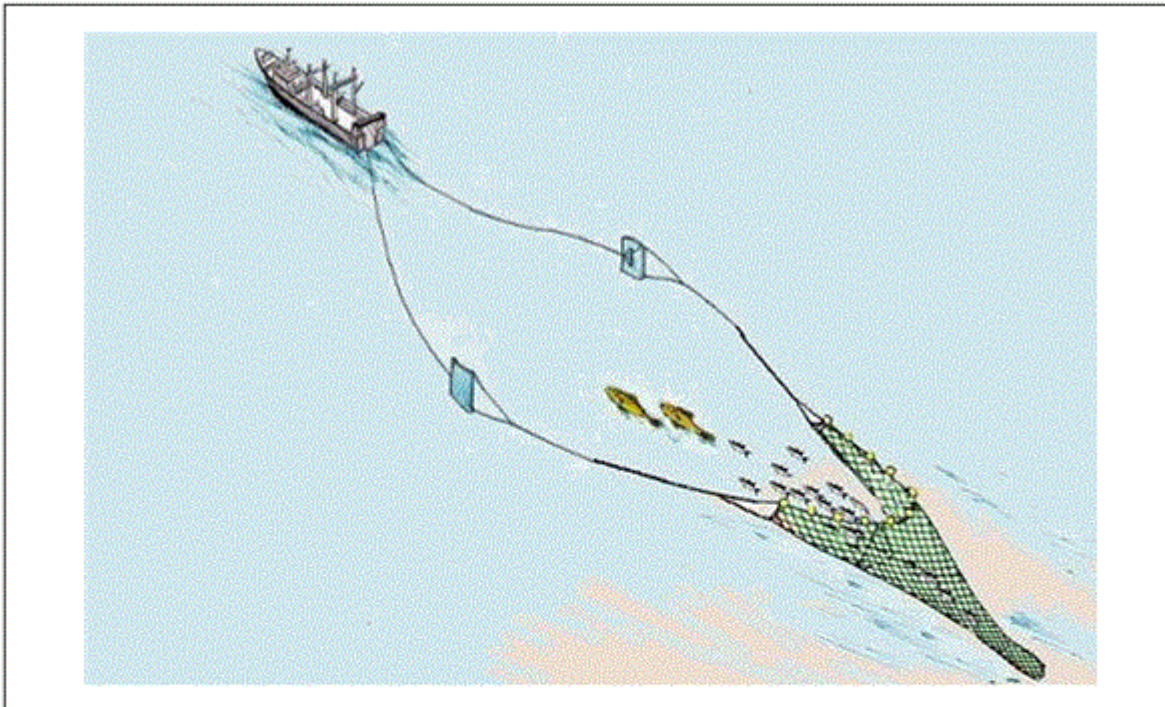
[부도 사-2]

동해구중형트롤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사-3]

동해구중형트롤망 조업모식도



아. 대형선망어업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아-1 및 부도 아-2와 같다.

가) 긴 네모꼴 모양으로 섯그물, 몸그물, 고기받이로 구성된 어구

나) 상부에는 뜸과 같은 부력재를 달고, 하부에는 발들과 같은 침강재(沈江材)를 달아 어구가 수직으로 전개되도록 구성된 어구

다) 발줄에 줍고리와 줍줄을 부착한 어구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본선, 등선, 운반선으로 구성된 선단을 이루어 1)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둘러치거나 포위하여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아-3과 같다.

가) 본선(本船: 어구를 투망·양망하는 그물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등선(燈船: 어군 탐색이나 짚어 등을 하는 보조선을 말하며, 어탐선이라고도 한다. 이하 같다)에 고삐줄과 줍줄의 끝을 넘겨주고 원을 그리듯이 어구를 투망한 후 등선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와 고삐줄과 줍줄을 넘겨받아 감으면서 그물을 양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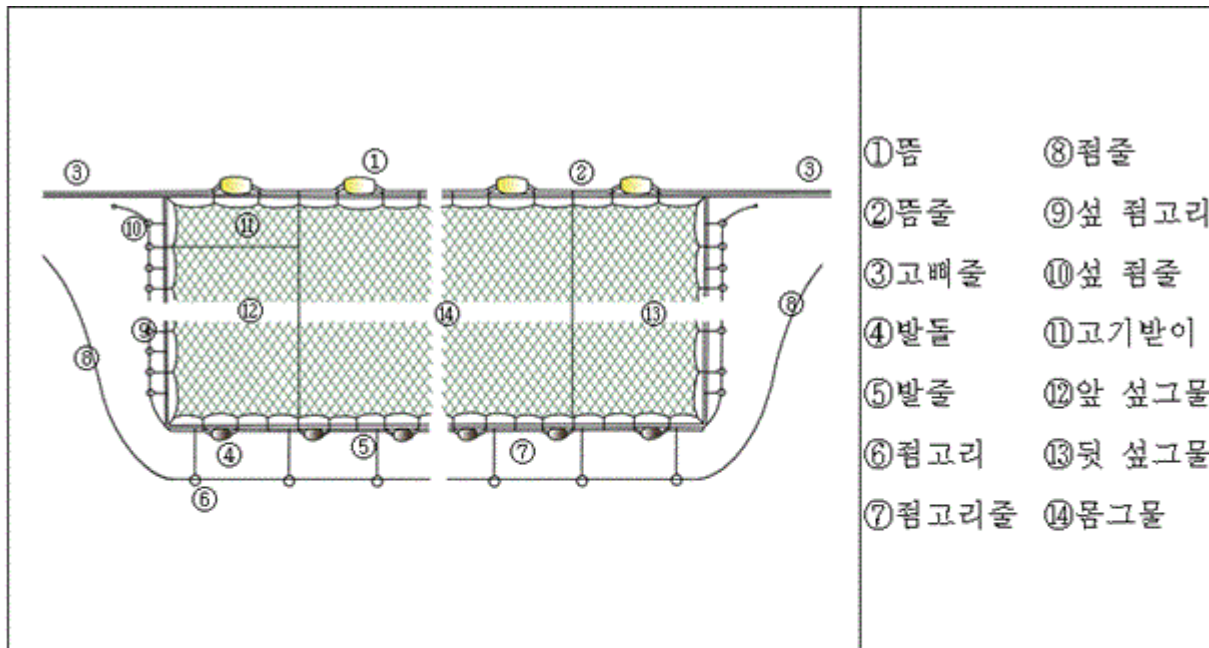
나) 가)의 방법 또는 본선에서 고삐줄과 줍줄이 연결된 부표를 투하하고 원을 그리듯이 어구를 투망한 후 부표를 다시 건져 올려 고삐줄과 줍줄을 감으면서 그물을 양망한다.

다) 양망 시 등선 1척은 본선이 그물쪽으로 달려 들어가지 않도록 본선의 양망 현 반대쪽에서 당겨주기도 하고, 다른 등선 1척은 뜸줄이 엉키지 않도록 뜸줄을 잡아당겨주는 역할도 수행한다.

라) 어구를 예망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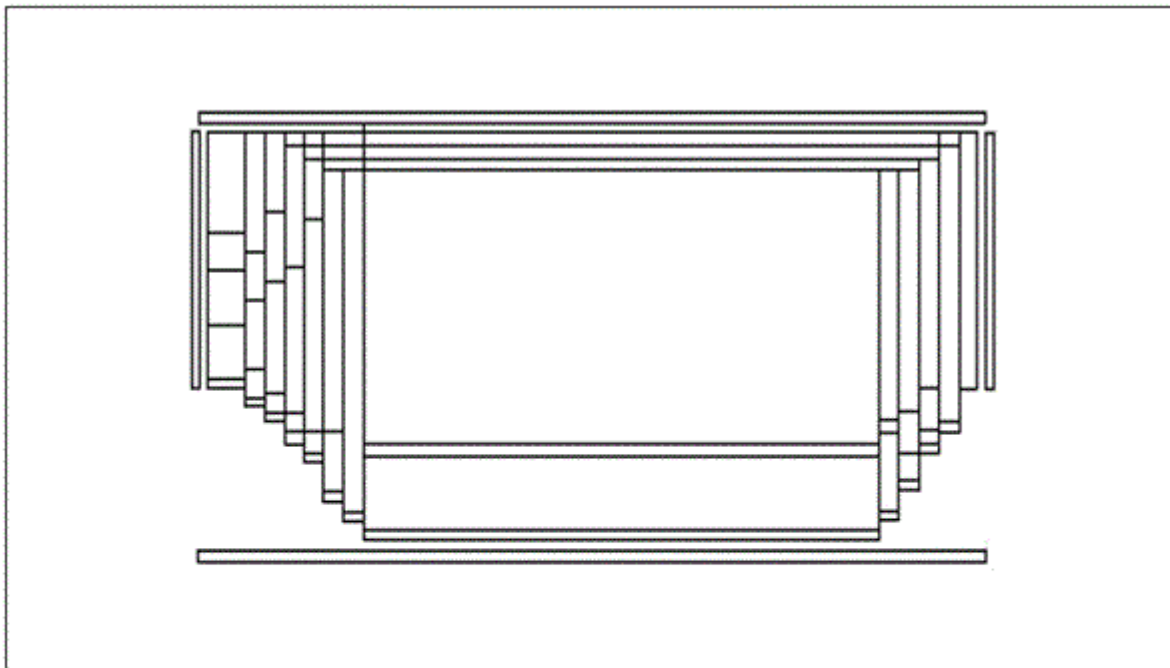
[부도 아-1]

대형선망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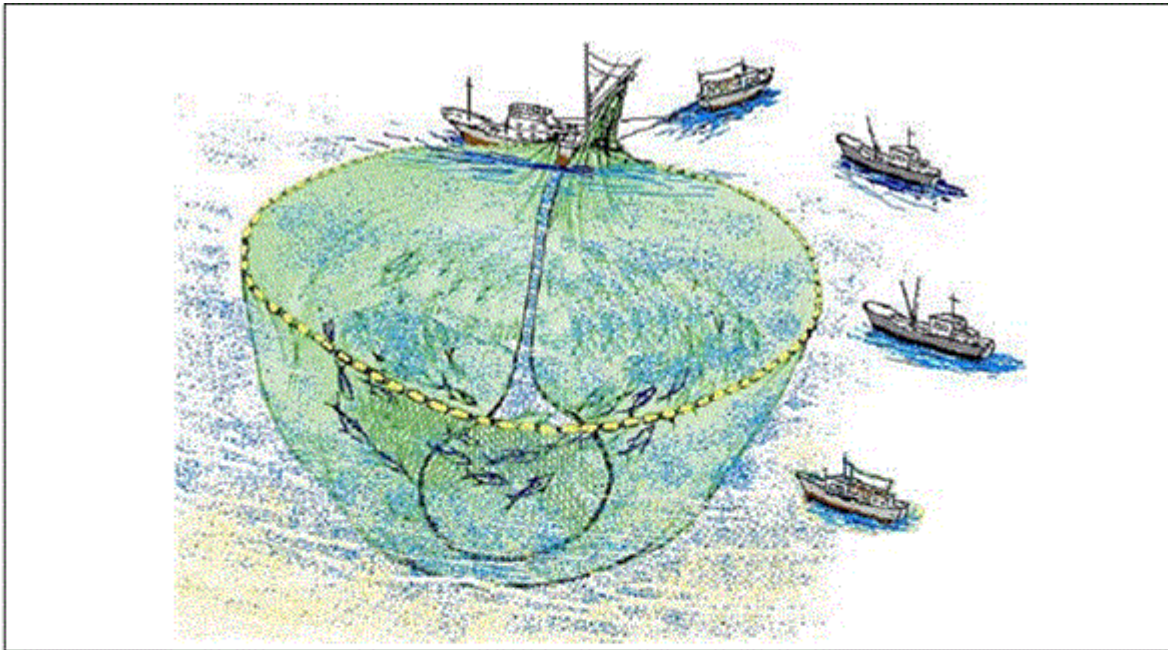
[부도 아-2]

대형선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아-3]

대형선망 조업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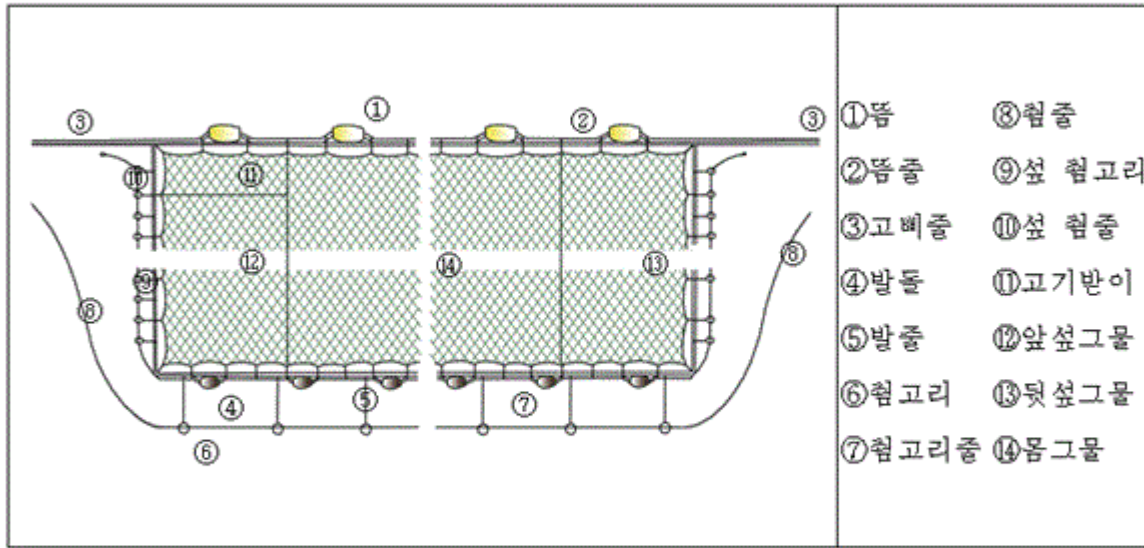


자. 소형선망어업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자-1 및 부도 자-2와 같다.
 - 가) 긴 네모꼴 모양으로 섯그물, 몸그물, 고기받이로 구성된 어구
 - 나) 상부에는 뜸과 같은 부력재를 달고, 하부에는 발돌과 같은 침강재를 달아 어구가 수직으로 전개되도록 구성된 어구
 - 다) 발줄에 찢고리와 찢줄을 부착한 어구
-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본선, 동선, 운반선으로 구성된 선단을 이루어 1)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둘러쳐서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자-3과 같다.
 - 가) 본선은 동선에 고삐줄과 찢줄의 끝을 넘겨주고 원을 그리듯이 어구를 투망한 후 동선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와 고삐줄과 찢줄을 넘겨받아 감으면서 그물을 양망한다.
 - 나) 가)의 방법 또는 본선에서 고삐줄과 찢줄이 연결된 부표를 투하하고 원을 그리듯이 어구를 투망한 후 부표를 다시 건져 올려 고삐줄과 찢줄을 감으면서 그물을 양망한다.
 - 다) 동선 또는 운반선은 본선에서 넘겨받은 고삐줄과 찢줄을 잡고 본선의 투망을 보조하다가 본선과 인접하게 되면 본선과 같이 어구의 일부를 양망하는 보조적인 역할도 수행한다.
 - 라) 사용하려는 어구는 본선에 실어야 하며, 어구를 예망해서는 안 된다. 다만, 본선에 실은 어구의 파손에 대비하여 예비 어구 1통을 운반선에 실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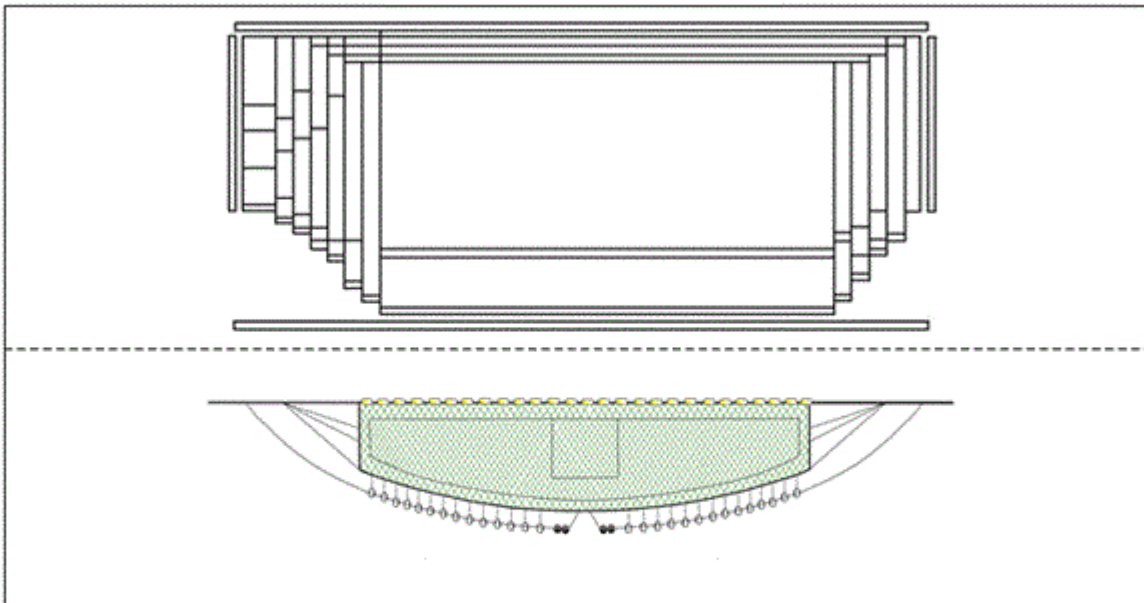
[부도 자-1]

소형선망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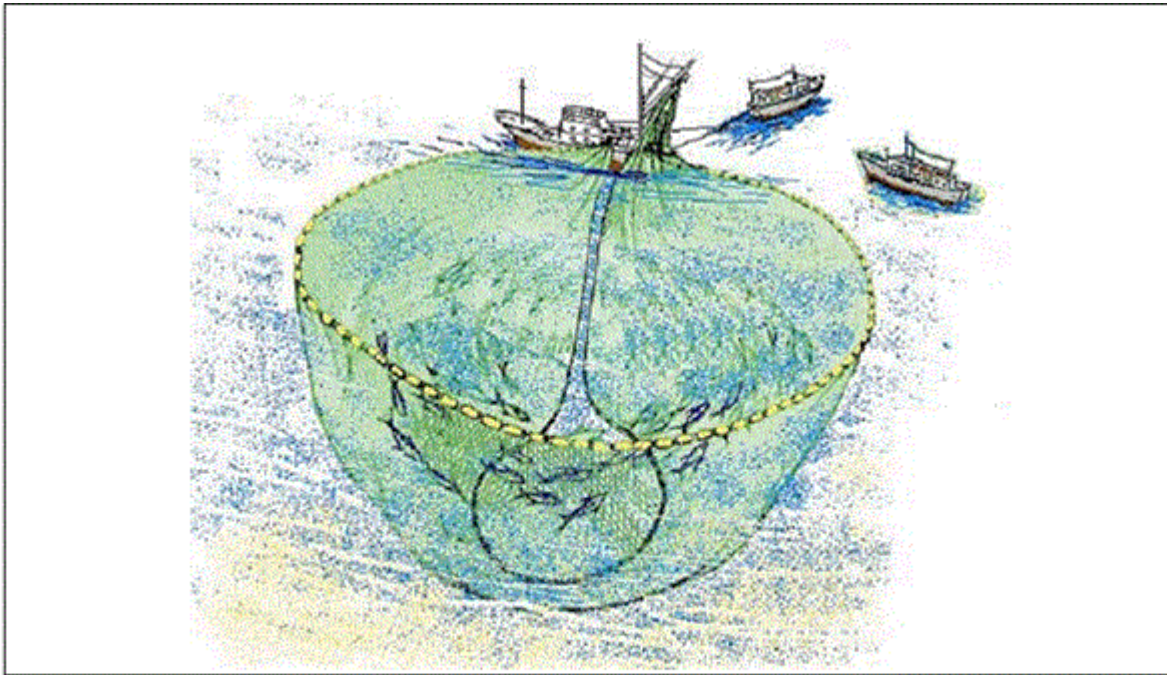
[부도 자-2]

소형선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자-3]

소형선망 조업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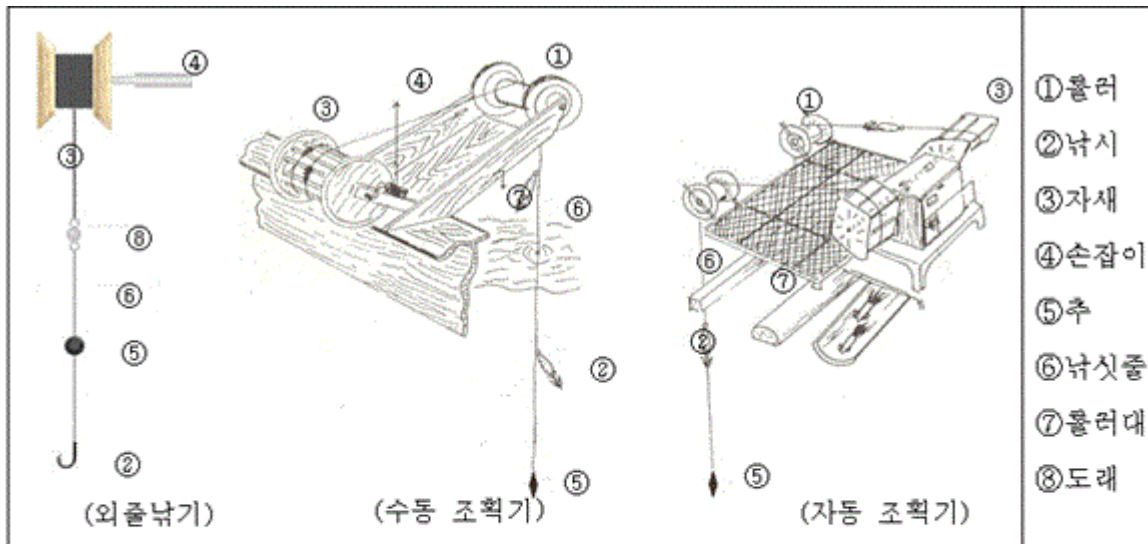


차. 근해채낚기어업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낚싯줄 한 가닥에 낚시 1개 또는 여러 개를 단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차-1 및 부도 차-2와 같다.
-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1)에 적합한 어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낚거나 채어서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차-3과 같다.
 - 가) 낚시가 달린 줄을 낚싯대, 조획기 등을 이용하여 수산동물을 낚거나 채어서 포획한다.
 - 나) 집어등(集魚燈), 물뚝(sea-anchor: 물속에서 저항을 받아 배가 바람에 의해 떠밀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나일론 등의 천을 이용하여 낙하산 모양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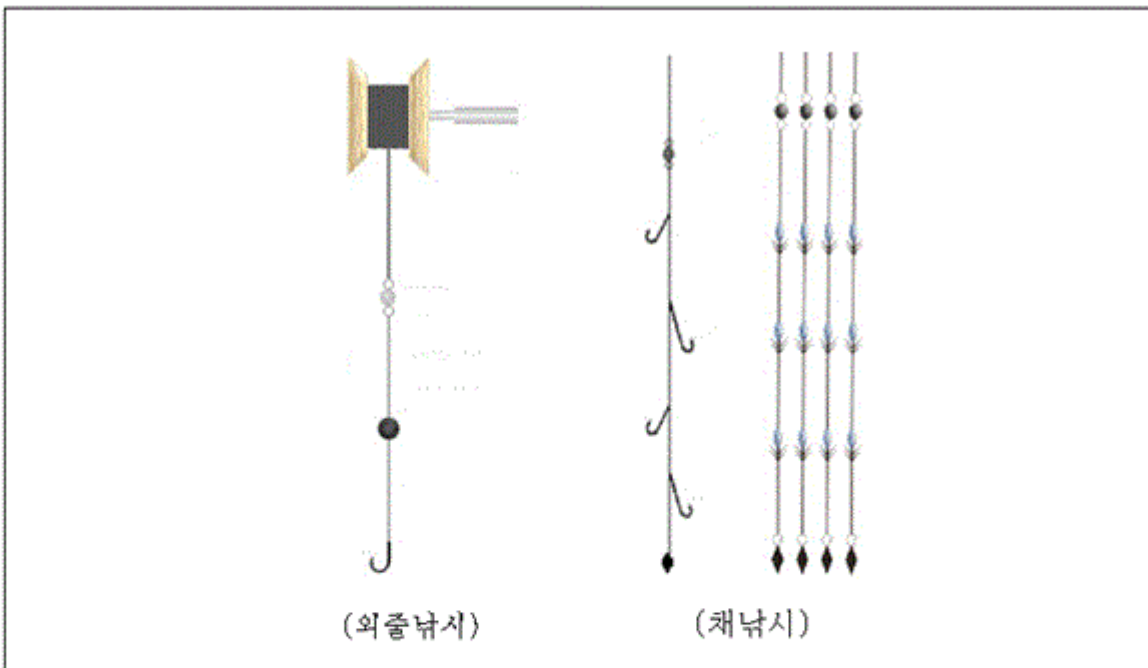
[부도 차-1]

근해채낚기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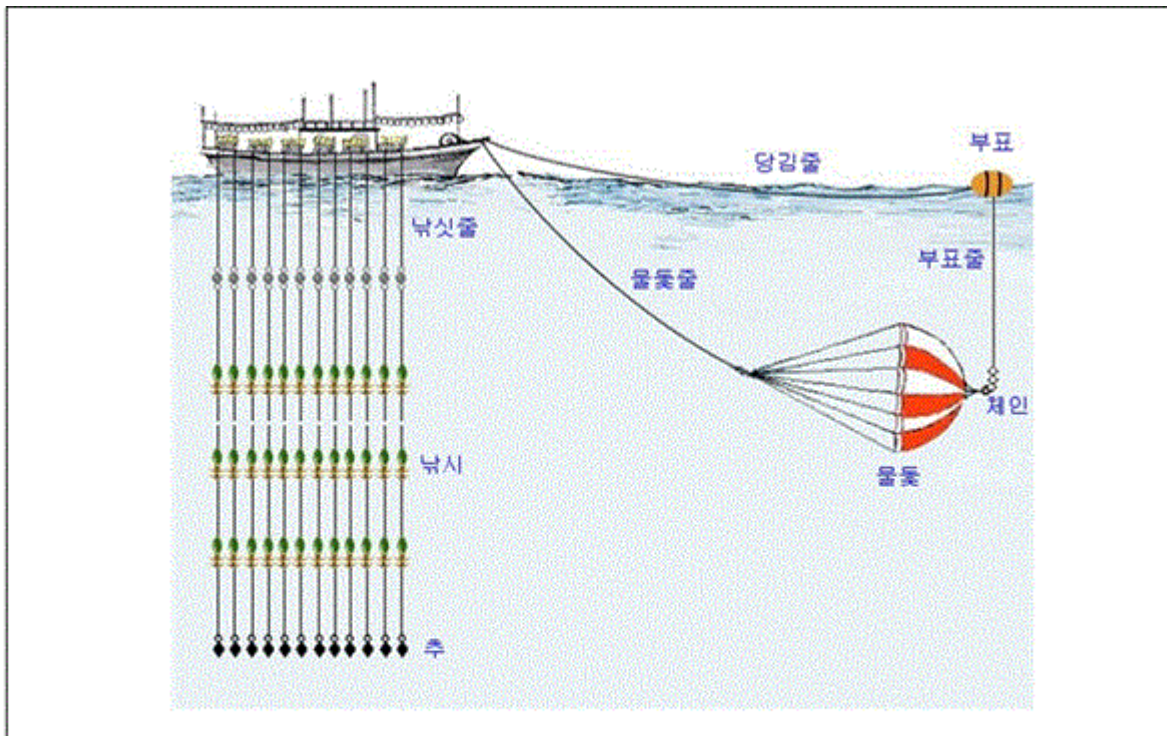
[부도 차-2]

근해채낚기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차-3]

근해채낚기 조업모식도



카. 근해자망어업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카-1 및 부도 카-2와 같다.

가) 직사각형의 띠 모양의 그물에 상부에는 뜸과 같은 부력재를 달고, 하부에는 발돌과 같은 침강재를 달아 그물이 수직으로 전개되도록 구성된 어구

나) 홑 그물로 구성된 어구

다) 뿔침대(자망어구에서 뜸줄과 발줄을 수직방향으로 연결하는 막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뿔침대를 뜸줄과 발줄 사이에 수직방향으로 부착한 어구

라) 허가받은 어선의 선복량별로 다음 표의 어구량 이내의 어구(어구를 부설한 경우에는 어구의 틀 양쪽 끝으로부터 닻이나 부표까지 연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어구의 길이는 제외한다)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어선의 자망에 뿔침대를 붙여 사용하는 어구의 경우에는 어구량 1천5백미터(인천광역시·경기도 해역에서 꽃게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어선 선복량에 따른 어구량을 적용한다)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하고, 인천광역시·경기도 해역 중 별표 7 주17) 바깥 쪽 해역에서 뿔침대를 붙인 자망에 세목망으로 된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구량 6백미터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 어선 선복량
(총톤수) | 어구량 |
|------------------|---|
| 20톤 미만 | 1만2천미터[동해안(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과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북의 해역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서는 11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0일까지 3만5천미터]. 다만, 어선에는 3천미터 이내의 어구를 따로 실을 수 있다. |
| 20톤 이상
40톤 미만 | 1만4천미터(동해안에서는 11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0일까지 4만5천미터). 다만, 어선에는 4천미터 이내의 어구를 따로 실을 수 있다. |
| 40톤 이상 | 1만6천미터(동해안에서는 11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0일까지 7만미터). 다만, 어선에는 5천미터 이내의 어구를 따로 실을 수 있다. |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허가받은 부속선은 사용할 수 있다)으로 1)에 적합한 어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그물에 낚히거나 얹히도록 잡는 것으로 조업모식도는 부도 카-3과 같다. 다만, 수산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뱀침대를 부착한 경우에는 수산동물을 그물에 갇히도록 포획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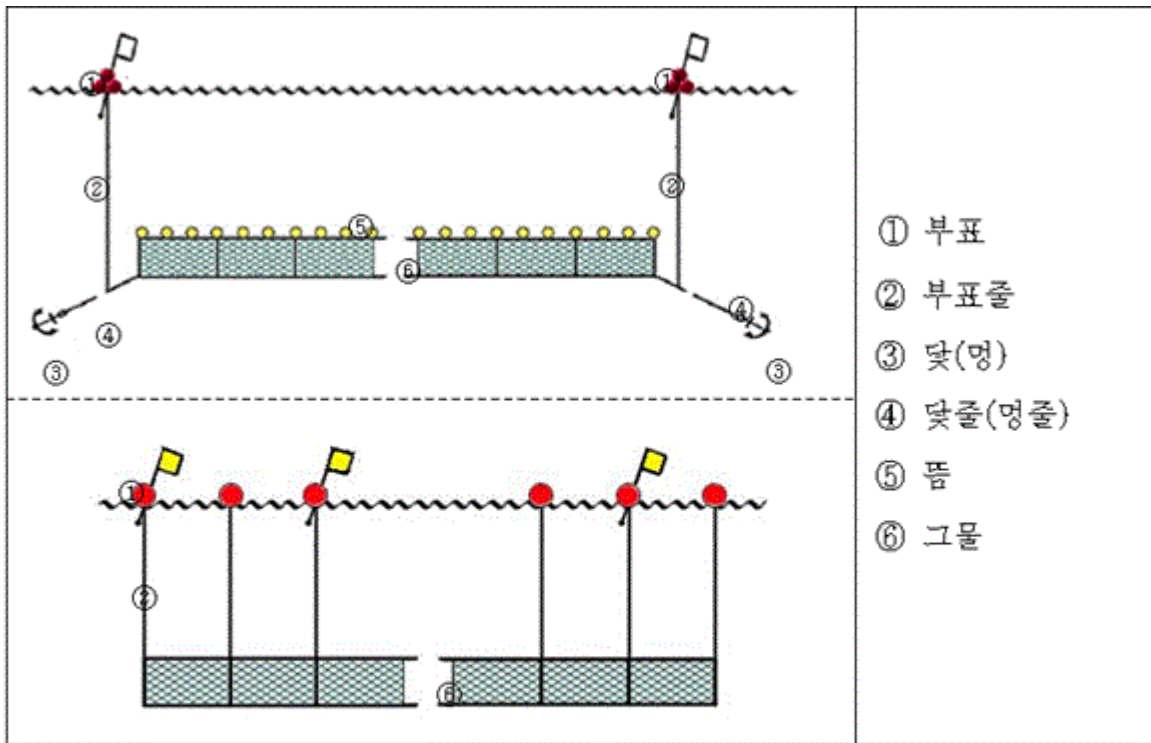
가) 부표, 닻(명), 그물, 닻(명), 부표 순서로 투망한다.

나) 어구를 일정 시간 동안 잠기게 한 후 양망한다.

다) 표층, 중층, 저층에 고정 부설하거나 해류나 조류를 따라 흘러가도록 부설한다. 다만, 해류나 조류를 따라 흘러가도록 어구를 부설할 경우에는 닻(명)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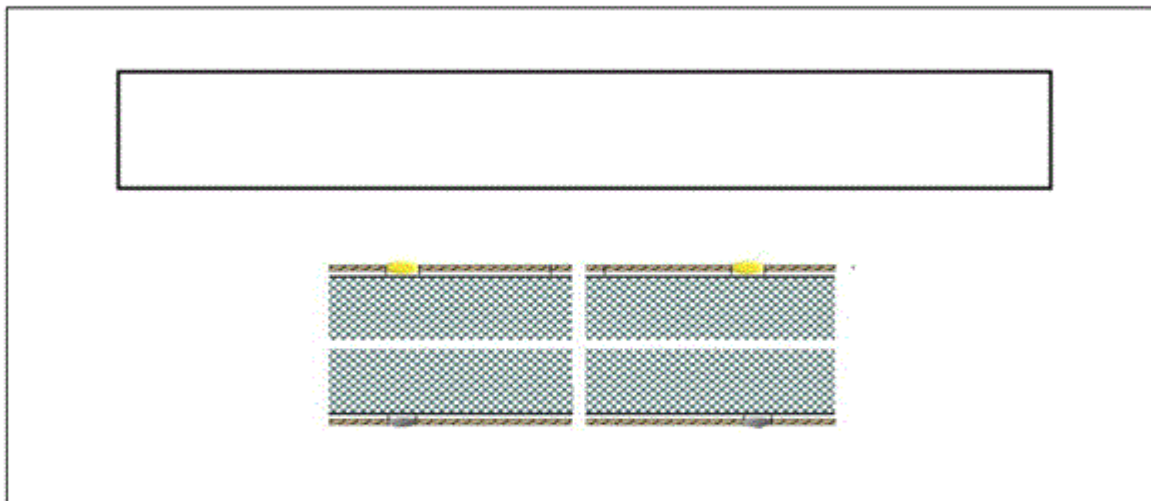
[부도 카-1]

근해자망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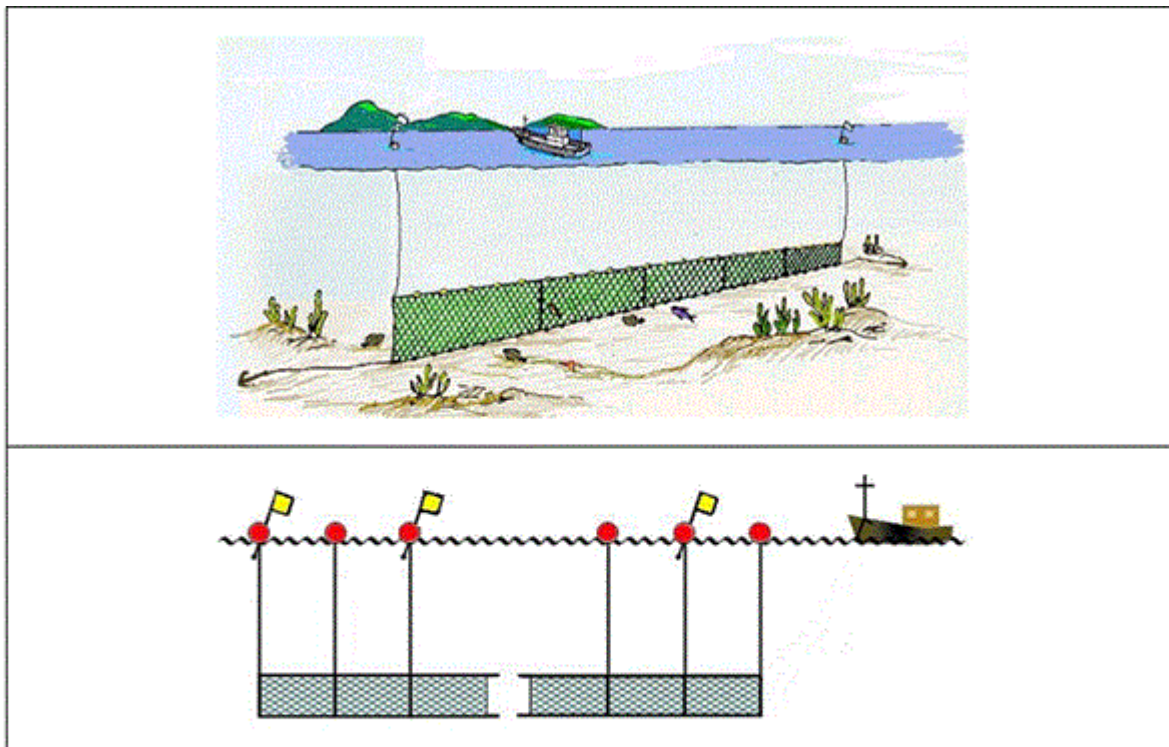
[부도 카-2]

근해자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카-3]

근해자망 조업모식도



타. 근해안강망어업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표준어구 구성도, 어류분류망 구성도는 각각 부도 타-1부터 부도 타-3까지와 같다.

가)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나) 자루그물 입구 상부에는 뜰과 같은 부력재를 달고, 하부에는 발들과 같은 침강재를 달며, 양쪽 측면에는 범포(帆布: 돛천)를 달아 그물이 상하 또는 좌우로 전개되도록 구성된 어구

다) 세망(細網)으로 된 자루그물 내부에 어류를 분류하는 그물을 여러 개 부착할 경우 부착한 어류 분류망에는 어류 탈출구를 설치해야 하며, 그물코 크기는 별표 8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라) 15톤 이내의 어구(어구용 닻을 포함한다)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경기도 및 충청남도 해역에서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20톤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실을 수 있다.

-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1)에 적합한 어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간 수산동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타-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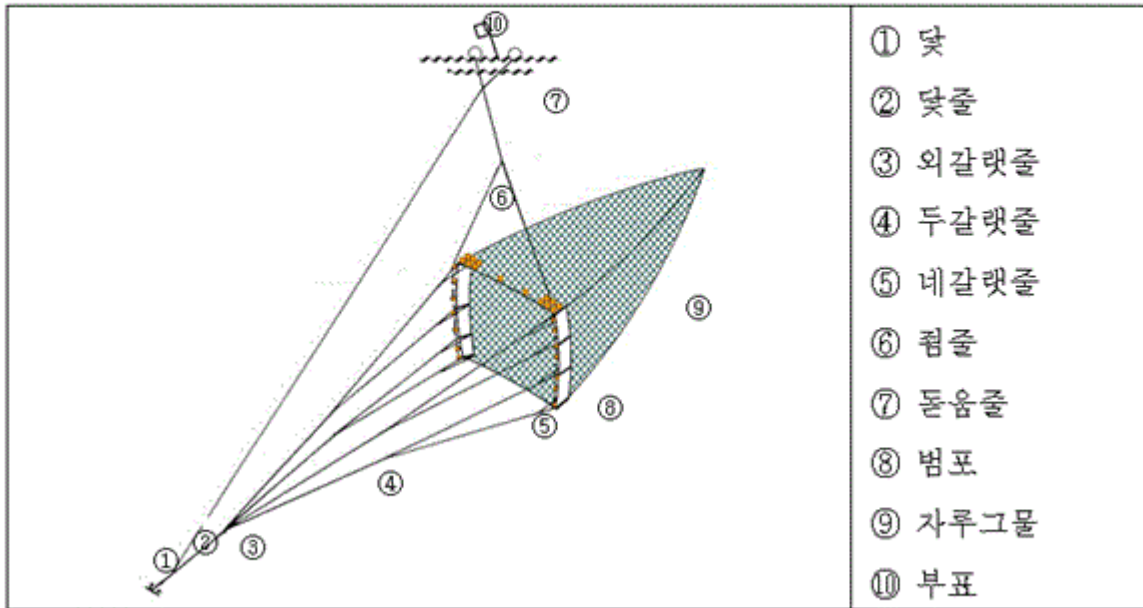
가) 자루그물을 해저에 닻으로 고정 부설하여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간 수산동물을 포획한다.

나) 어구 고정용 닻, 자루그물, 범포를 투하한 뒤 줍줄, 돌움줄, 부표 순서로 투망한다.

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투망의 역순으로 양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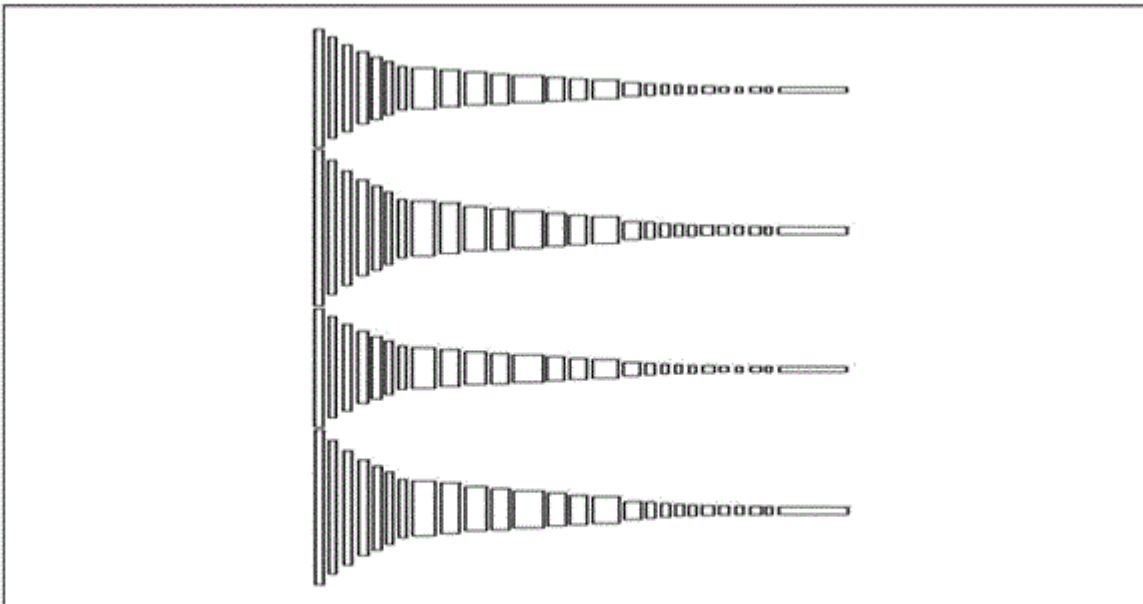
[부도 타-1]

근해안강망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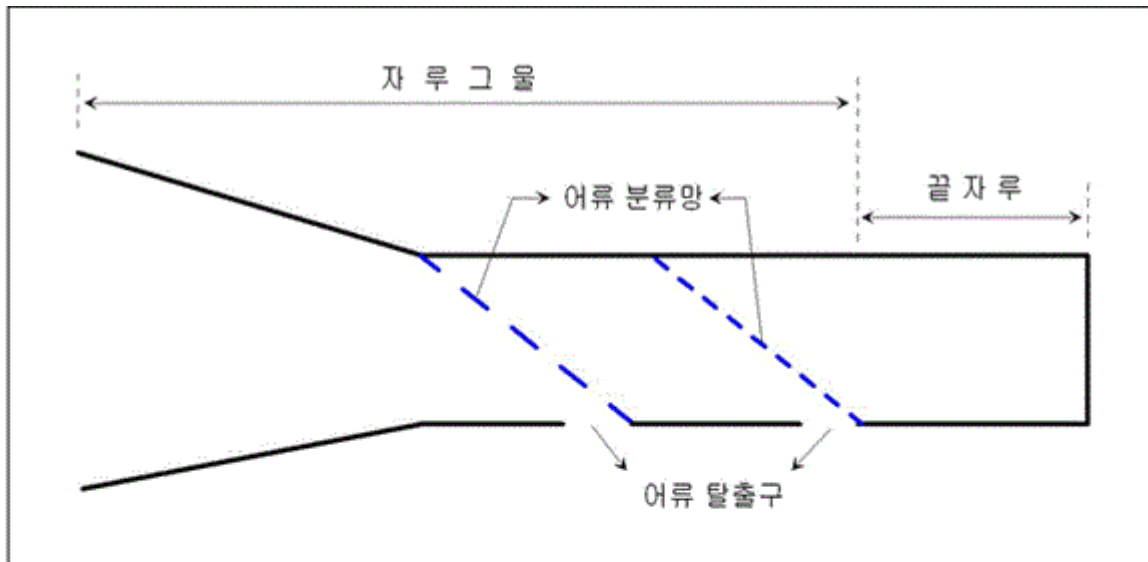
[부도 타-2]

근해안강망 표준어구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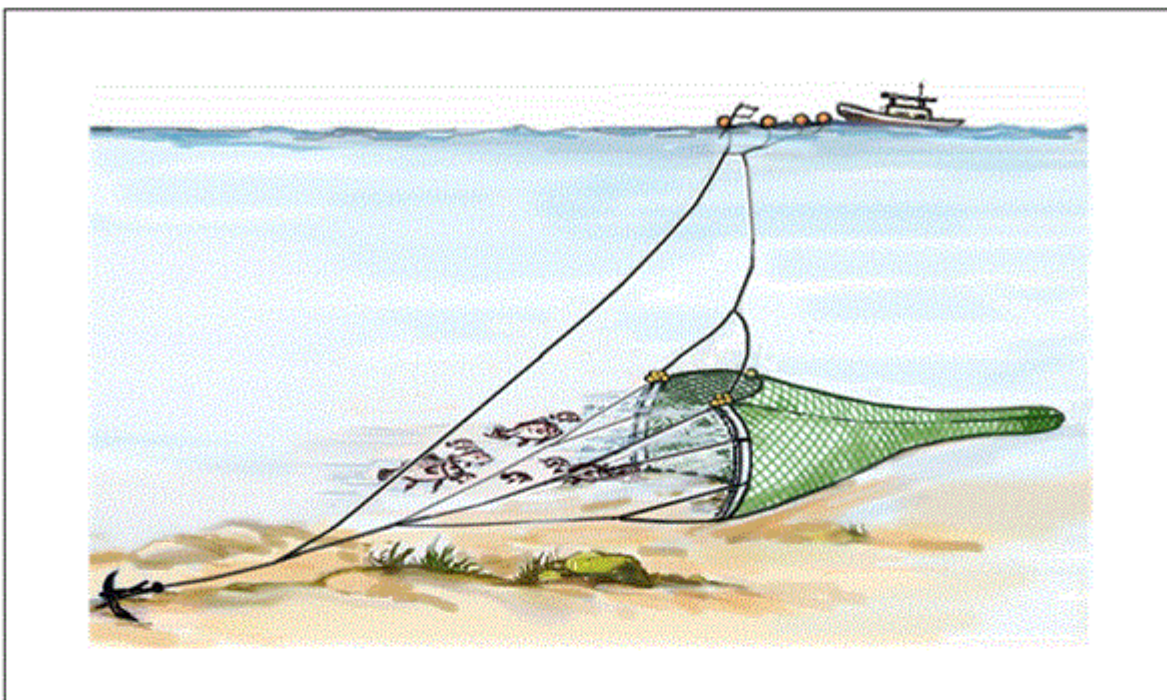


[부도 타-3]

근해안강망 어류분류망 구성도



[부도 타-4]

근해안강망 조업모식도

파. 근해봉수망어업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파-1 및 부도 파-2와 같다.

가) 봉수망: 사각형 모양의 그물 상부는 뜰대로, 하부는 발돌과 돌움줄로, 양쪽 측면은 찢고리와 찢줄로 구성된 어구

나) 초망: 긴 찻대와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다) 들망: 그물에 테가 없는 사각형 모양 등의 그물과 돌움줄로 구성되거나, 그물의 위 언저리에 테가 있는 형태와 돌움줄로 구성된 어구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1)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들어 올려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파-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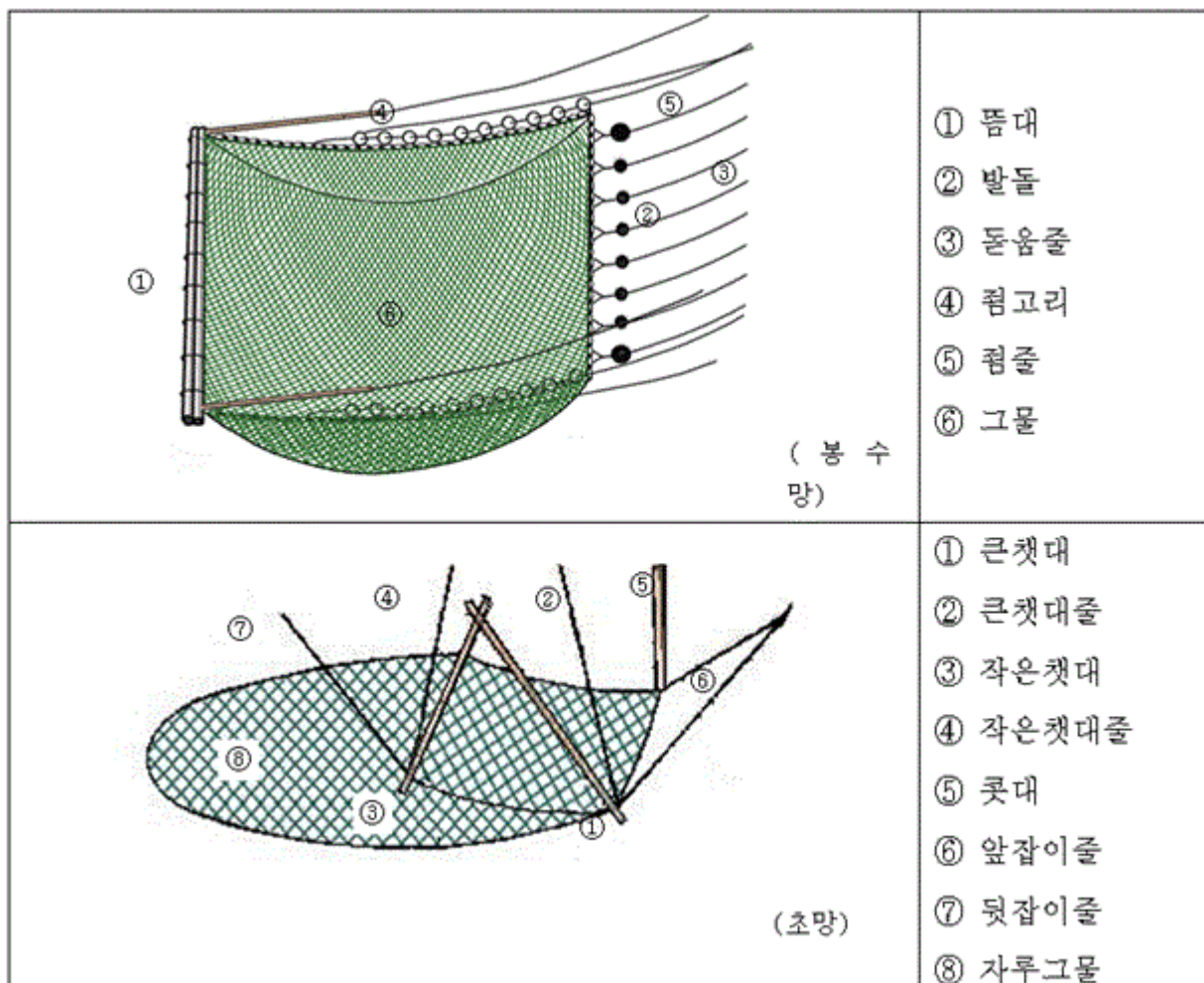
가) 물속에 미리 어구를 수평 또는 수직으로 부설하여 수산동물이 어구 위에 오면 어구를 들어 올려 수산동물을 포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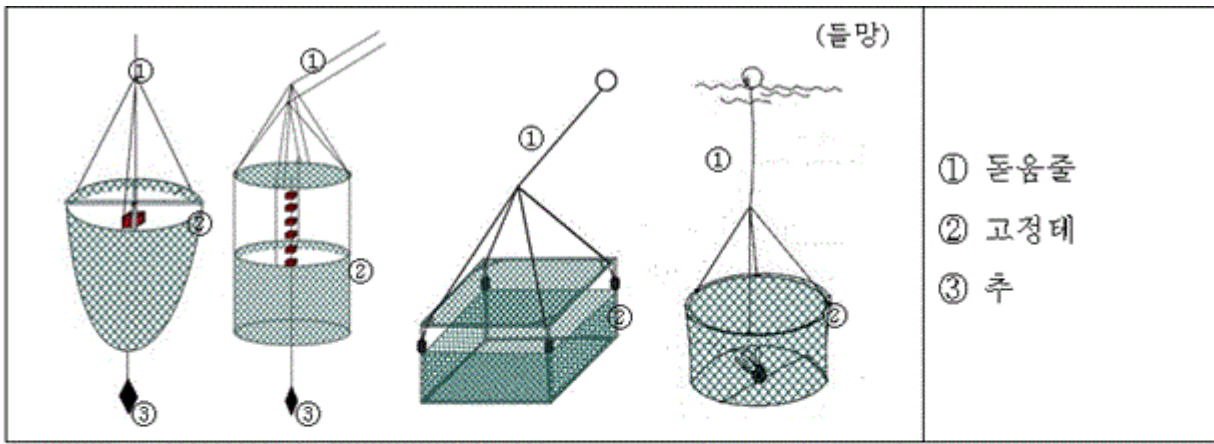
나) 가) 또는 물속에 미리 부설해 놓은 어구 속으로 수산동물을 유도해서 수산동물이 어구 속으로 들어가면 어구를 들어 올려 수산동물을 포획한다.

다) 집어등을 사용한 조업이 가능하다.

[부도 파-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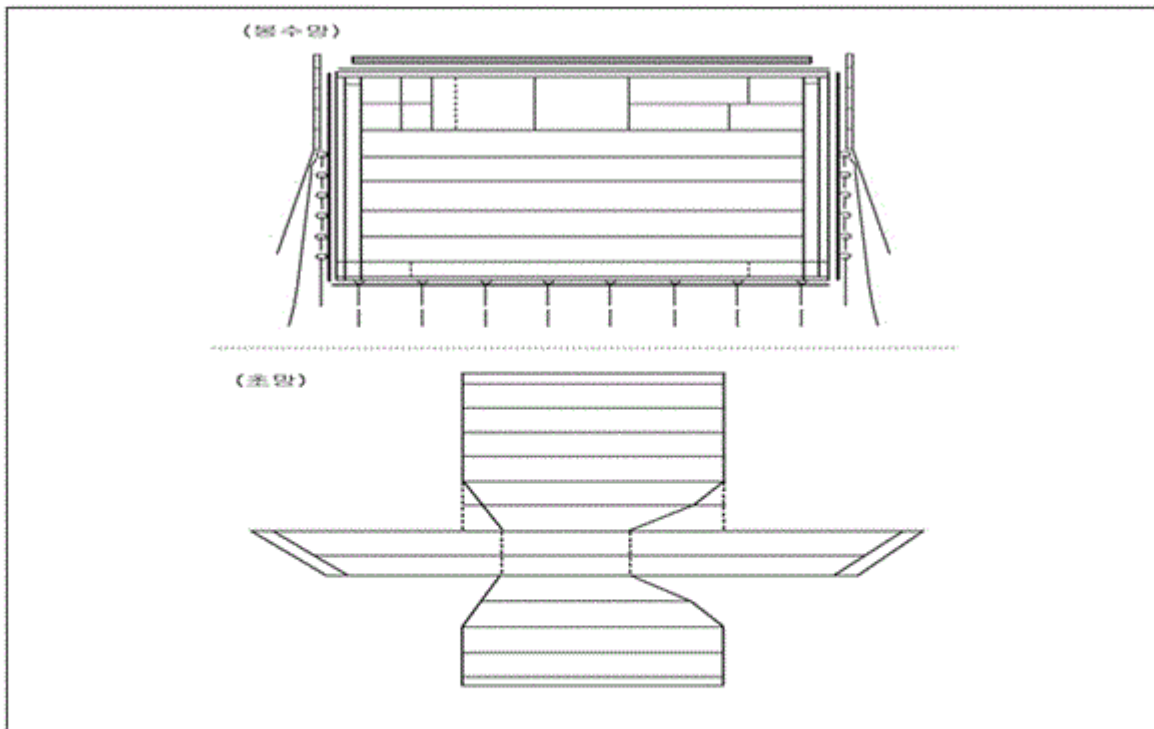
근해붕수망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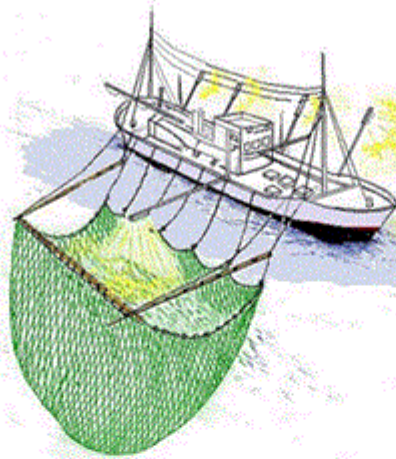
[부도 파-2]

근해붕수망 표준어구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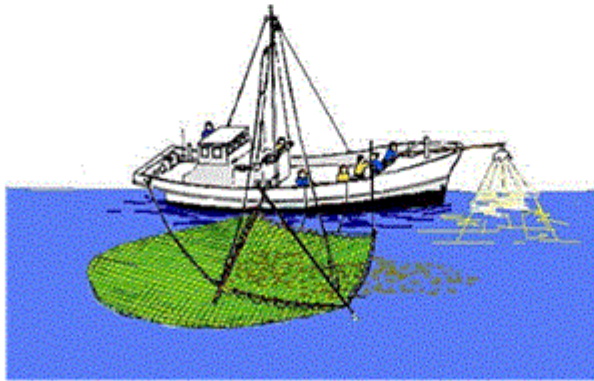


[부도 파-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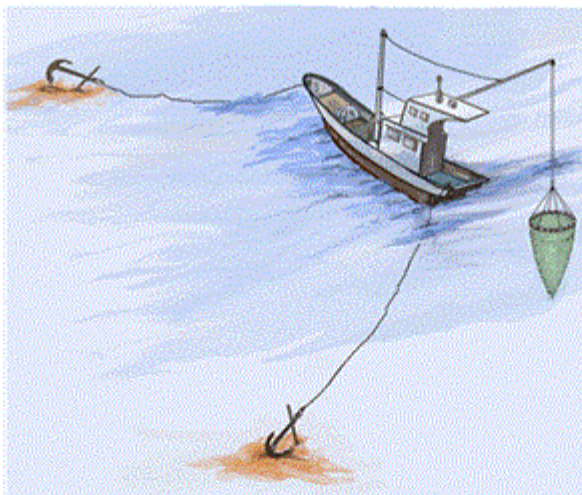
근해붕수망 조업모식도



(봉수망)



(초망)



(들망)

하. 근해자리돔들망어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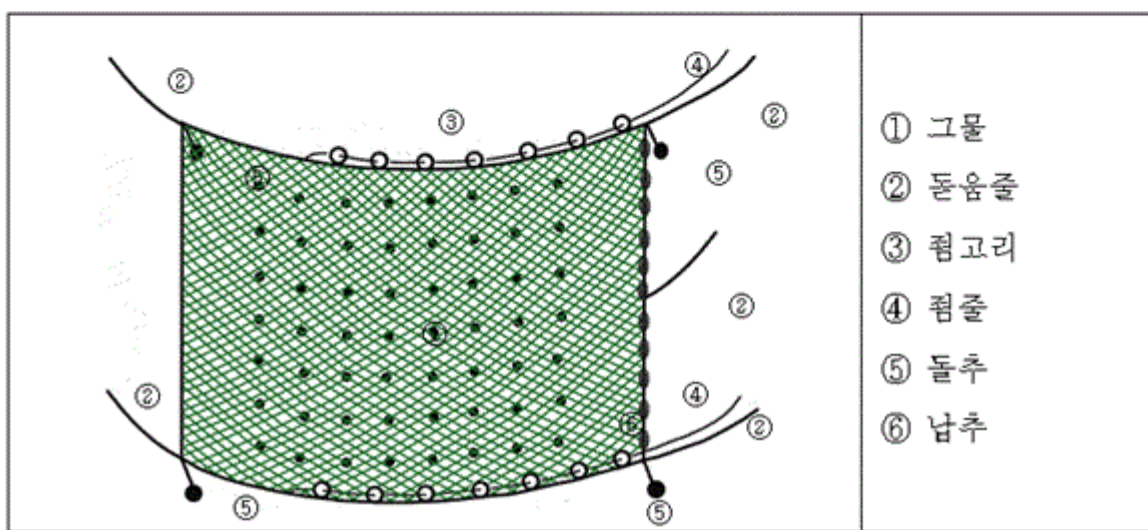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그물에 테가 없는 사각형 모양 등의 그물과 돌움줄로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하-1 및 부도 하-2와 같다.
-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본선과 어로보조선으로 1)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들어 올려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하-3과 같다.

가) 물속에 미리 어구를 수평으로 부설하여 대상 수산동물이 어구 위에 오면 어구를 들어 올려 수산동물을 포획한다.

나) 그물의 네 모서리에 닻을 투하하고 돌움줄로 그물을 펼치면서 투망한 후, 그물 위에 대상 수산동물이 모이면 돌움줄을 당기면서 그물을 들어 올려 오목한 주머니 모양을 만들어 수산동물을 포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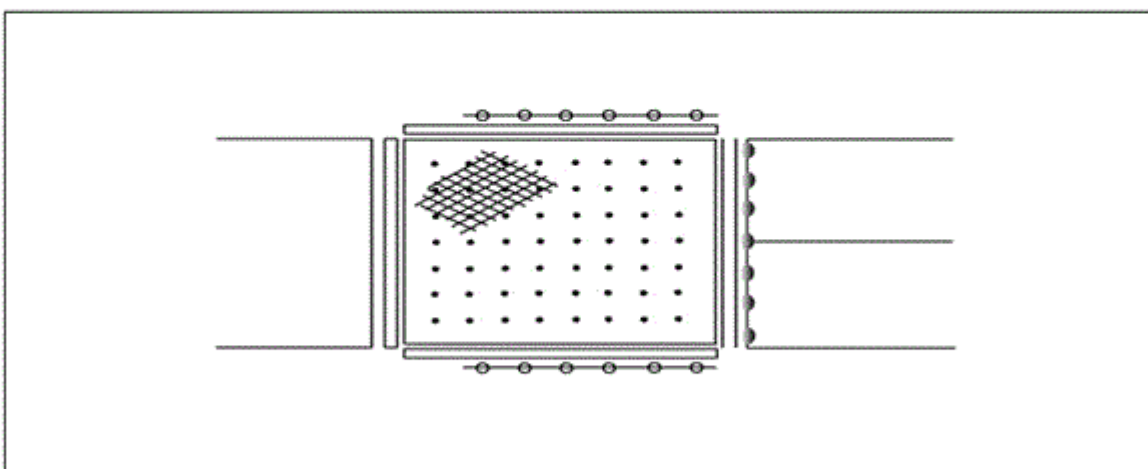
[부도 하-1]

근해자리돔들망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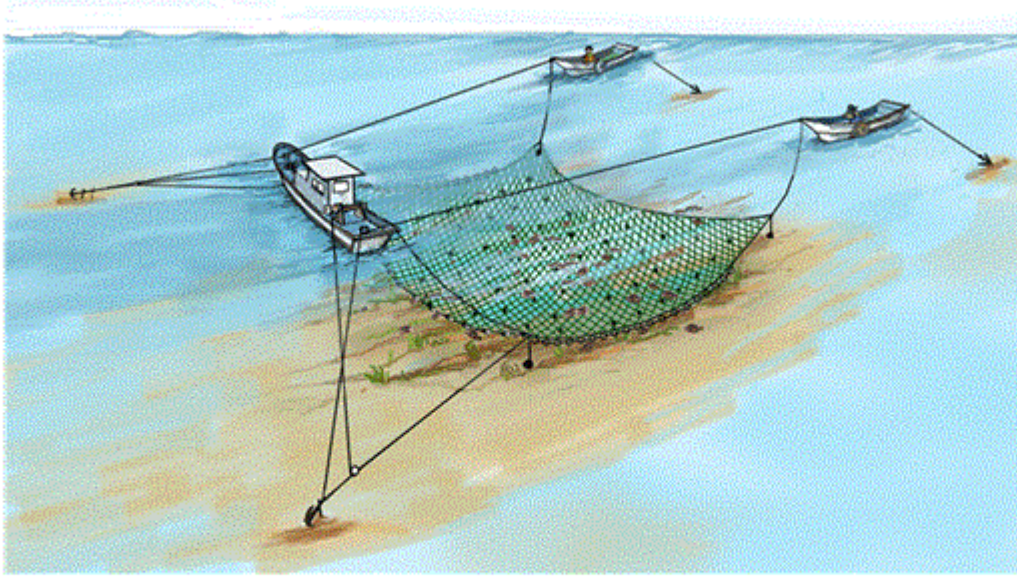
[부도 하-2]

근해자리돔들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하-3]

근해자리돔들망 조업모식도



거. 근해장어통발어업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는 부도 거-1과 같다.

가) 합성수지로 된 긴 원통의 한쪽 또는 양쪽에 깔때기 모양의 입구가 있는 어구

나) 허가받은 어선의 규모별로 다음의 어구량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 어선 규모
(총톤수) | 어구량 |
|------------------|---|
| 8톤 이상
20톤 미만 | (1) 통발의 개수는 3,200개
(2) 통발의 설치 간격은 10미터 이내 |
| 20톤 이상
40톤 미만 | (1) 통발의 개수는 7,000개
(2) 통발의 설치 간격은 10미터 이내 |
| 40톤 이상 | (1) 통발의 개수는 10,000개
(2) 통발의 설치 간격은 10미터 이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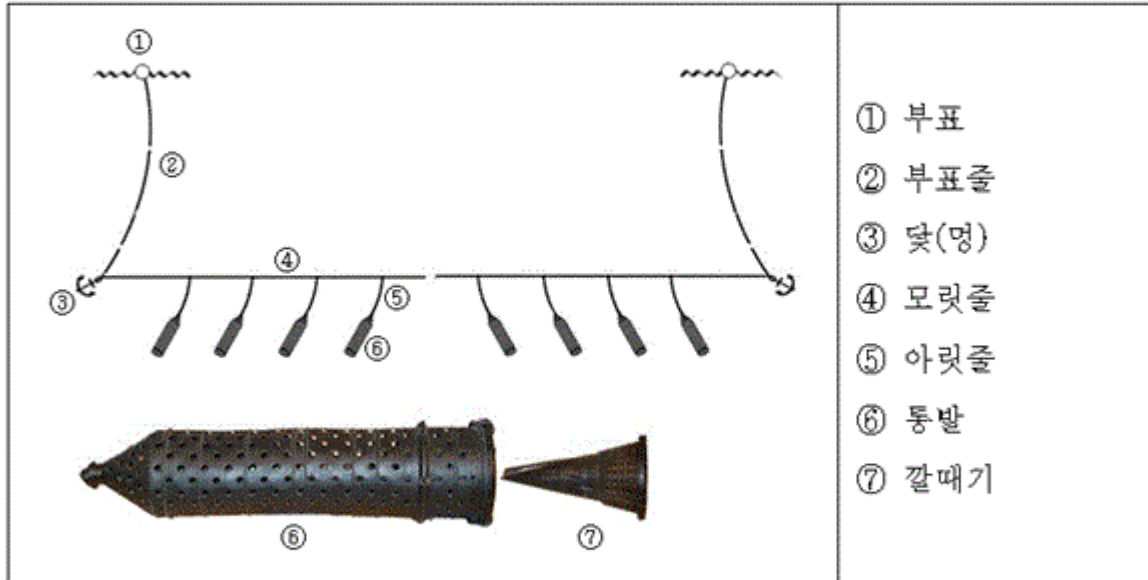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1)에 적합한 어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발 속으로 들어간 장어를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거-2와 같다.

가) 부표, 닻(명), 통발이 달린 모릿줄, 닻(명), 부표 순서로 투승한다.

나) 어구를 일정 시간 동안 잠기게 한 후 양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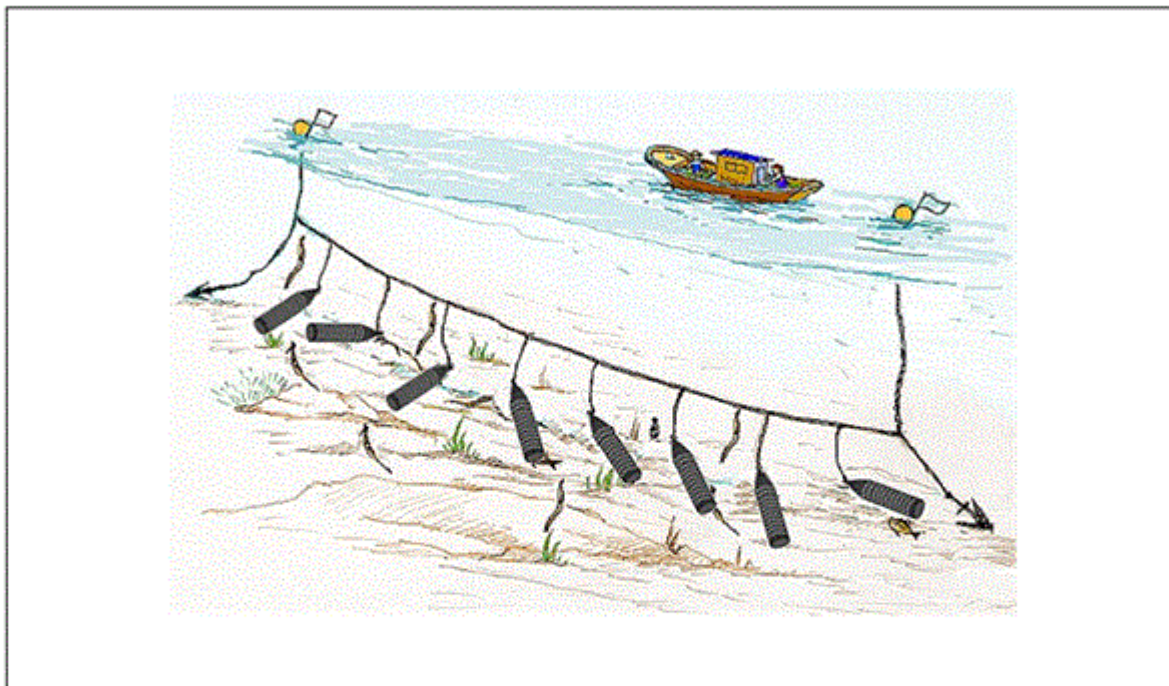
[부도 거-1]

근해장어통발 어구 겨냥도



[부도 거-2]

근해장어통발 조업모식도



너. 근해문어단지어업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는 부도 너-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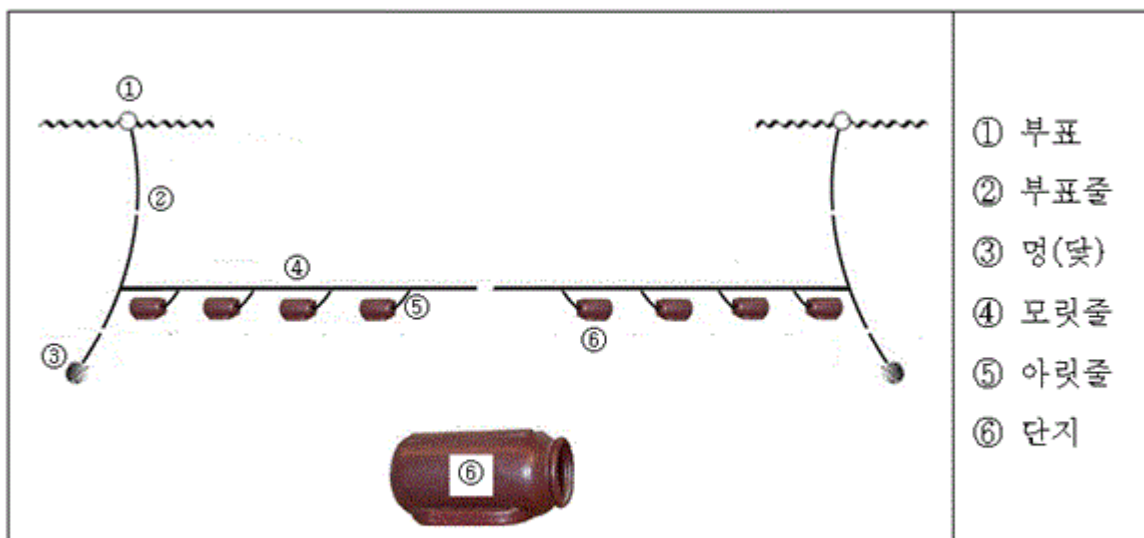
- 가) 토기 또는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단지 형태로 제작된 어구
 나) 허가받은 어선의 규모별로 다음의 어구량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 어선 규모
(총톤수) | 어구량 |
|----------------|---|
| 8톤 이상 | (1) 단지의 개수는 24,000개
(2) 단지의 설치 간격은 10미터 이내 |

-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1)에 적합한 어구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단지 속으로 들어간 대상 문어류를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너-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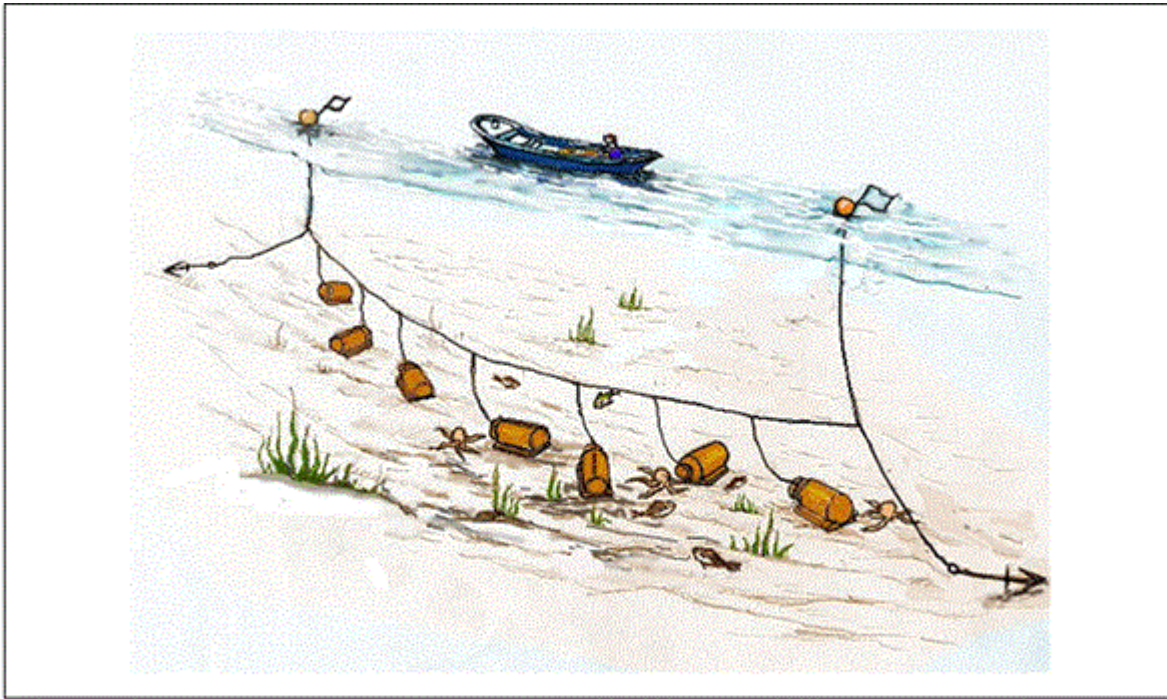
- 가) 여러 개의 단지를 모릿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달아 부설한다.
 나) 부표, 닻(명), 단지가 달린 모릿줄, 닻(명), 부표 순서로 투승한다.
 다) 어구를 일정 시간 동안 잠기게 한 후 양승한다.

[부도 너-1]

근해문어단지 어구 겨냥도

[부도 너-2]

근해문어단지 조업모식도



더. 근해통발어업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와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더-1 및 부도 더-2와 같다.
 - 가) 일정한 형태의 고정된 데 위에 그물 등을 씌운 것으로서 윗면 또는 옆면에 입구가 있는 어구
 - 나) 합성수지·철사·나무 등으로 제작된 통발인 경우에는 그물코의 모양이 정사각형으로 제작된 어구
 - 다) 가로·세로·높이(원통형인 경우 지름)의 길이를 각각 120센티미터 이하로 제작한 어구
 - 라) 허가받은 어선의 규모별로 다음의 어구량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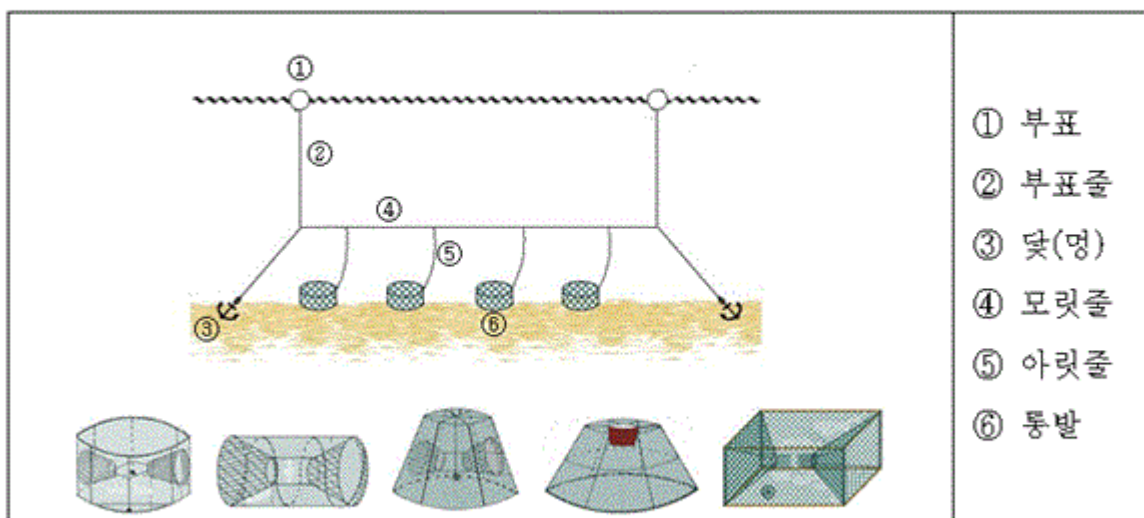
| 어선 규모
(총톤수) | 어구량 |
|------------------|---|
| 8톤 이상
20톤 미만 | (1) 통발의 개수는 2,500개. 다만, 동해안은 4,000개로 한다.
(2) 통발의 설치 간격은 10미터 이내. 다만, 동해안은 40미터 이내로 한다. |
| 20톤 이상
40톤 미만 | (1) 통발의 개수는 3,500개. 다만, 동해안은 5,500개로 한다.
(2) 통발의 설치 간격은 10미터 이내. 다만, 동해안은 40미터 이내로 한다. |
| 40톤 이상 | (1) 통발의 개수는 5,000개. 다만, 동해안은 7,000개로 한다.
(2) 통발의 설치 간격은 10미터 이내. 다만, 동해안은 40미터 이내로 한다. |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1)에 적합한 어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발 속으로 들어간 수산동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더-3과 같다.

- 가) 여러 개의 통발을 모릿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달아 부설한다.
 나) 부표, 닻(명), 통발이 달린 모릿줄, 닻(명), 부표 순서로 투승한다.
 다) 어구를 일정 시간 동안 잠기게 한 후 양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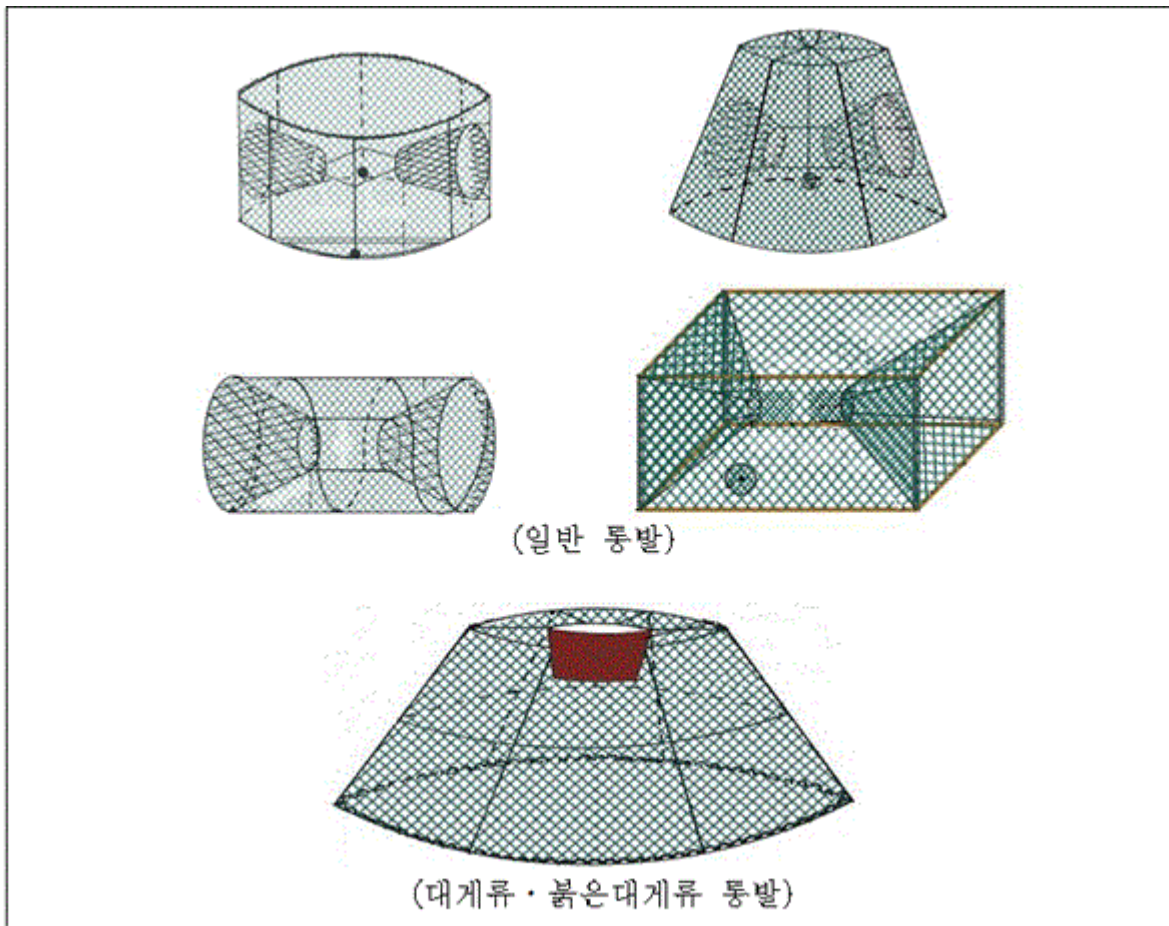
[부도 더-1]

근해통발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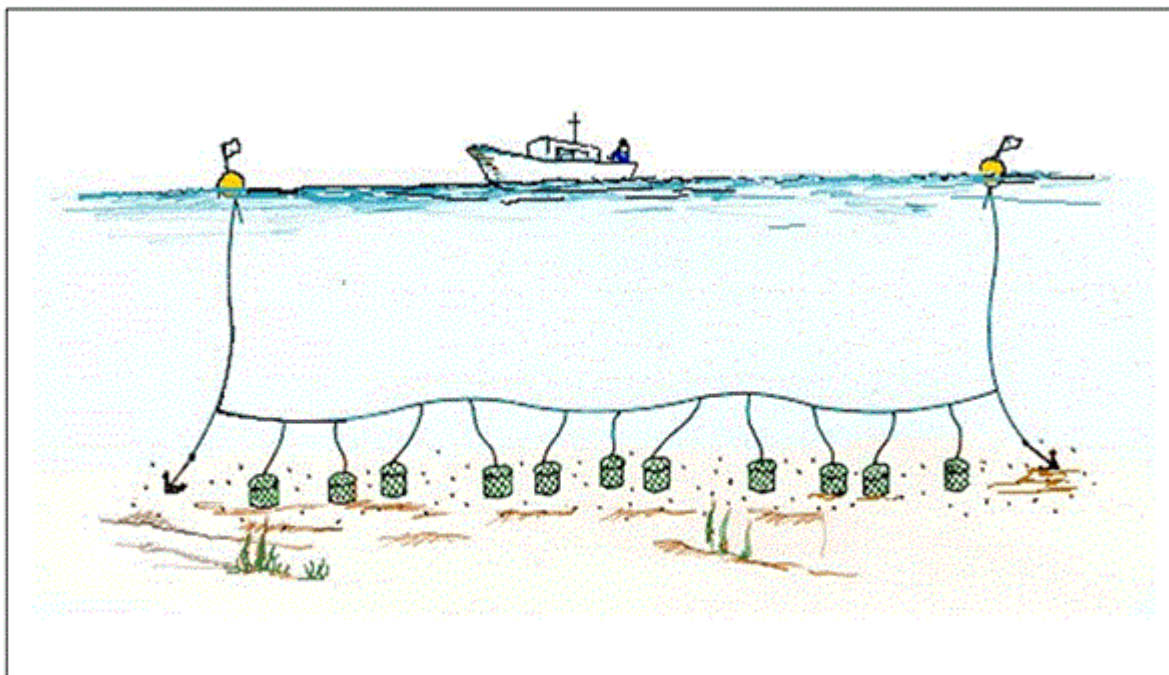
[부도 더-2]

근해통발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더-3]

근해통발 조업모식도



러. 근해연승어업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

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러-1 및 부도 러-2와 같다.

가) 낚시, 아릿줄, 모릿줄 등으로 구성된 어구

나) 모릿줄에 여러 개의 아릿줄을 달고 아릿줄 끝에 낚시를 단 어구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1)에 적합한 어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낚아서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러-3과 같다.

가) 여러 개의 낚시를 모릿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달아 부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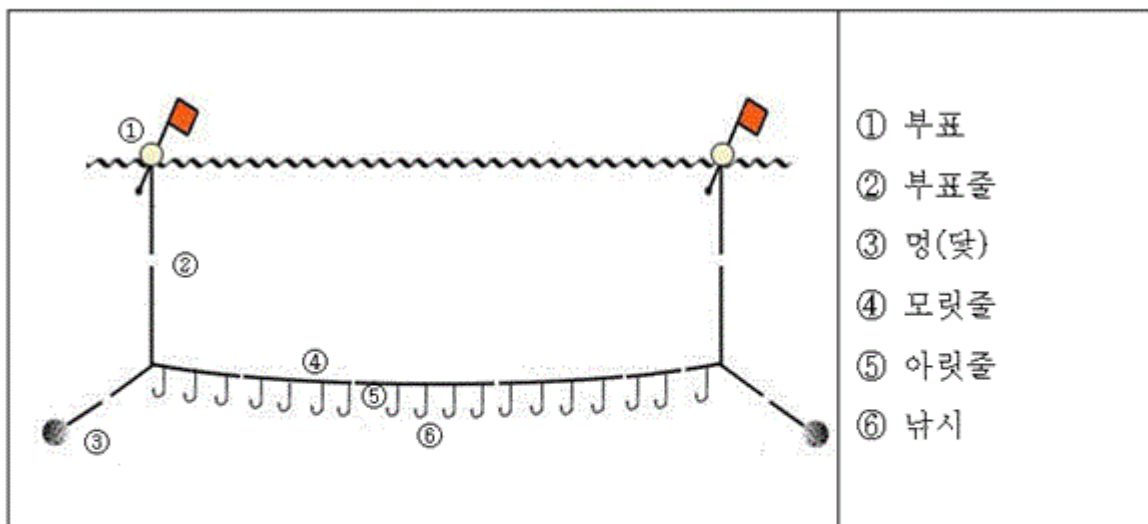
나) 부표, 닻(명), 낚시가 달린 모릿줄, 닻(명), 부표 순서로 투승한다.

다) 어구를 일정 시간 동안 잠기게 한 후 양승한다.

라) 수산동물의 분포 수층(水層)에 따라 모릿줄에 뜸을 일정한 간격으로 달아 부표줄의 길이로 어구의 부설 수층을 조절할 수 있다.

[부도 러-1]

근해연승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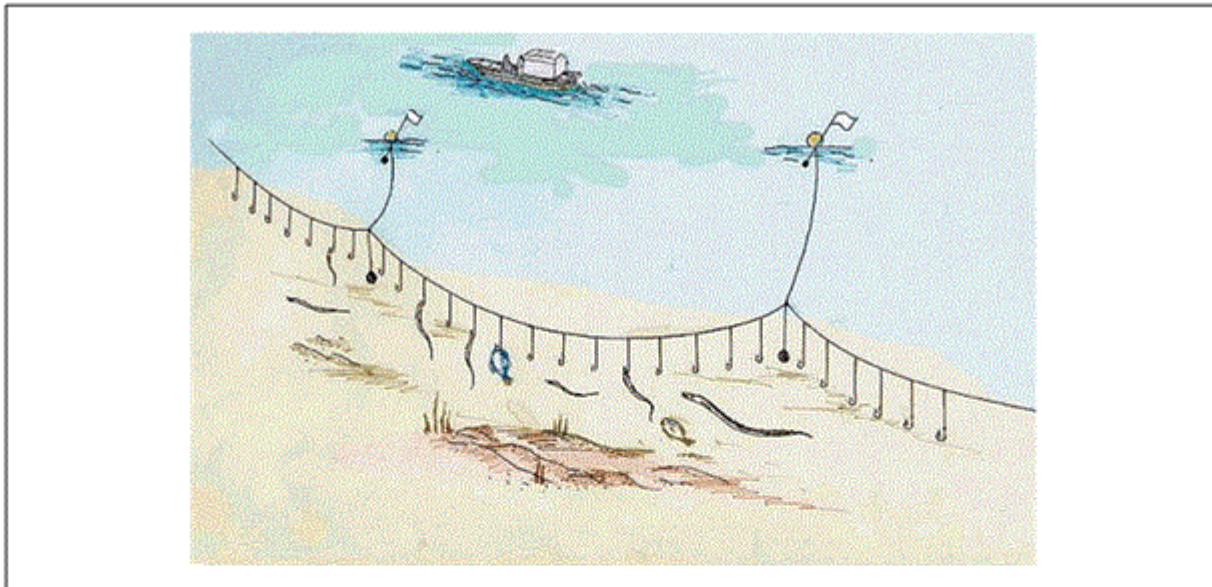
[부도 러-2]

근해연승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러-3]

근해연승 조업모식도



머. 근해형망어업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갈퀴형 또는 쓰레받기형 모양으로서 형망틀을 바닥에서 끌어 패류를 포획하는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머-1 및 부도 머-2와 같다.

가) 고정틀의 크기가 폭 8미터 이하, 높이 0.8미터 이하인 어구

나) 고정틀에 길이가 30미터 이하인 자루그물(자루그물에는 발줄, 발돌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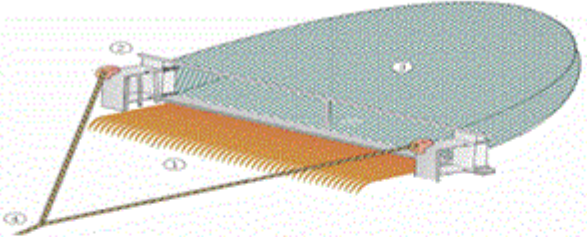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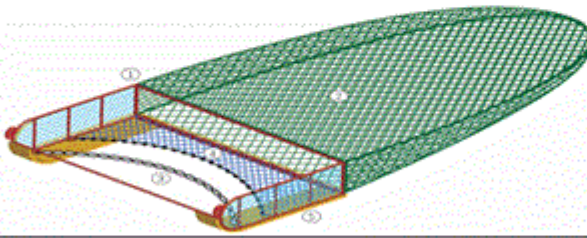
- 체인 등을 사용할 수 없다)이 직접 부착되어 있는 어구
- 다) 그물코의 안쪽 길이가 57밀리미터 이상인 어구
- 라) 갈퀴형 어구의 경우 고정틀 밑면에 갈퀴(해저 속에 서식하는 패류를 채취하기 위하여 고정틀의 밑면에 해저 방향으로 부착된 여러 개의 가늘고 긴 칼날 모양의 막대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40밀리미터 이상의 간격으로 부착되어 있는 어구
- 마) 쓰레받기형 어구의 경우 고정틀 앞에 문턱을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바) 고정틀 좌우에는 길이가 2.5미터 이하인 썰매판(고정틀이 바닥을 파고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정틀 좌우에 부착한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할 수 있으며, 썰매판 사이에는 2개 이내의 체인을 부착할 수 있다.
- 사) 어구에 흡입펌프 또는 분사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어구
- 아) 패류 외 수산동물의 포획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혼획저감장치를 어구에 부착해야 한다.
- 자) 고정틀의 폭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어구량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 고정틀의 폭 | 어구량 |
|---------------|-----|
| 2미터 미만 | 4통 |
| 2미터 이상 4미터 미만 | 2통 |
| 4미터 이상 8미터 이하 | 1통 |

-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1)에 따른 어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패류를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머-3과 같다.
- 가) 어구를 투하하고, 끌줄을 선체에 고정시킨 후 저층을 끌면서 예망한다.
- 나) 예망이 완료되면 끌줄을 감아 들어 자루그물을 양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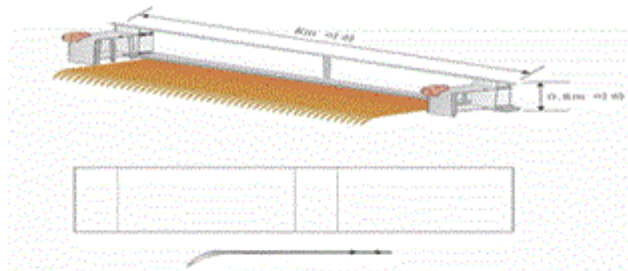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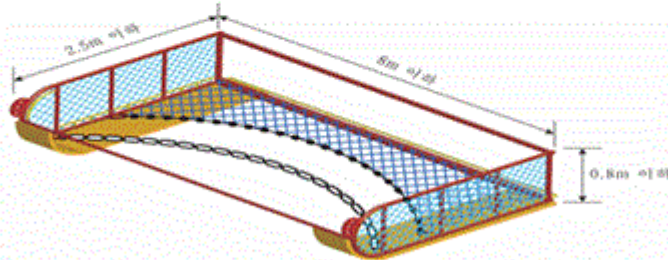
[부도 머-1]

근해형망 어구 겨냥도

| | | |
|-------|---|--|
| 갈퀴형 |  | ① 갈퀴
② 고정틀
③ 자루그물
④ 끌줄 |
| 쓰레받기형 |  | ① 고정틀
② 자루그물
③ 체인
④ 문턱
⑤ 썰매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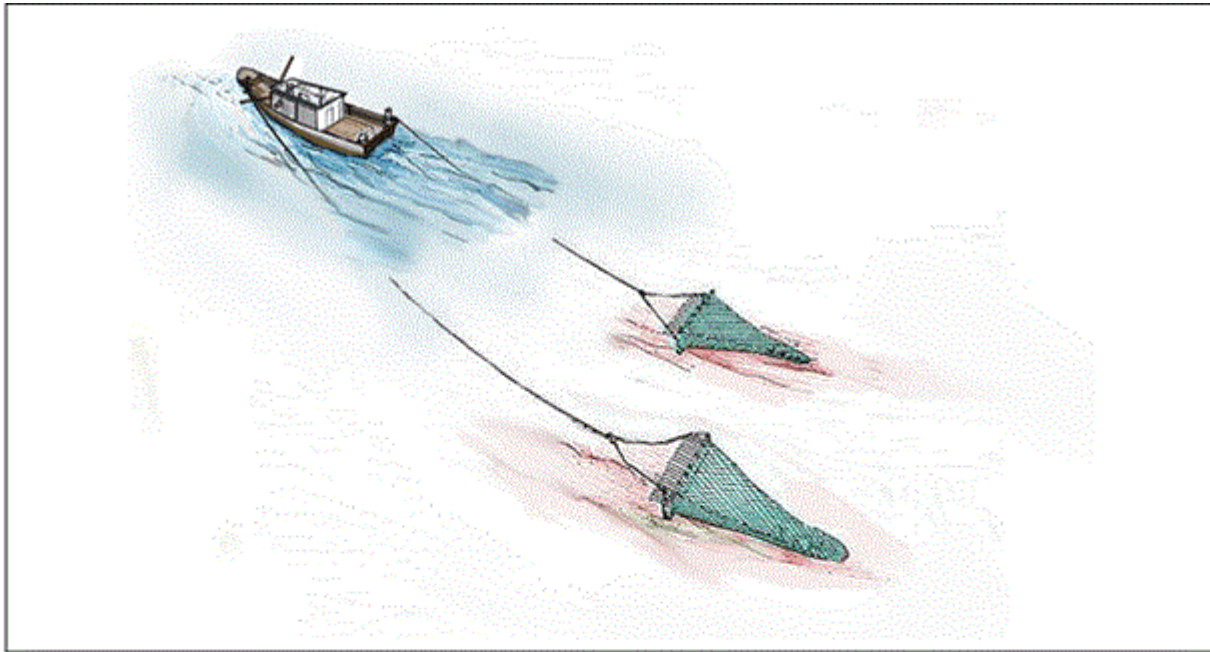
[부도 머-2]

근해형망 표준어구 구성도

| | |
|-------|--|
| 갈퀴형 |  |
| 쓰레받기형 |  |

[부도 머-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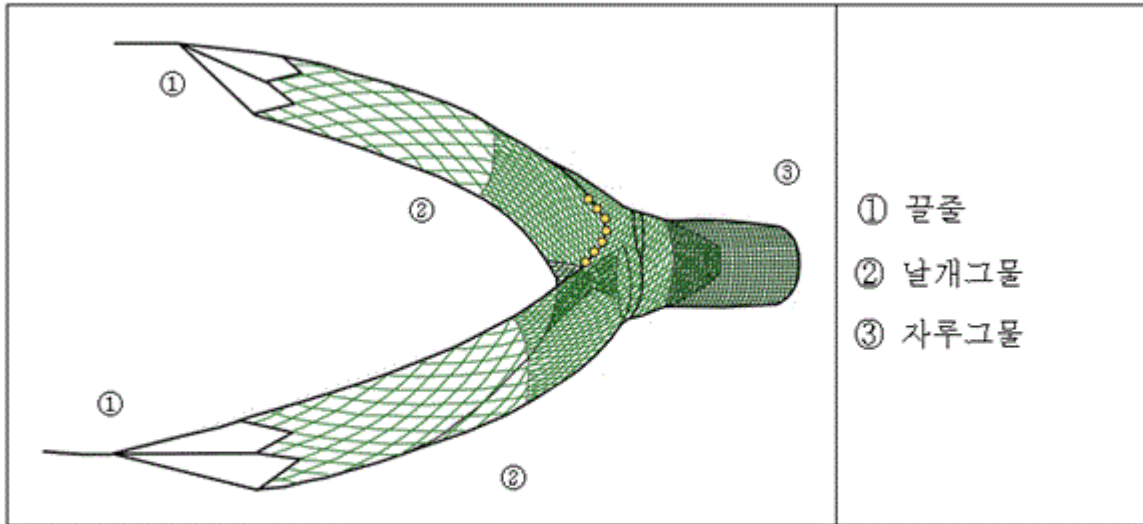
근해형망 조업모식도



버. 기선권현망어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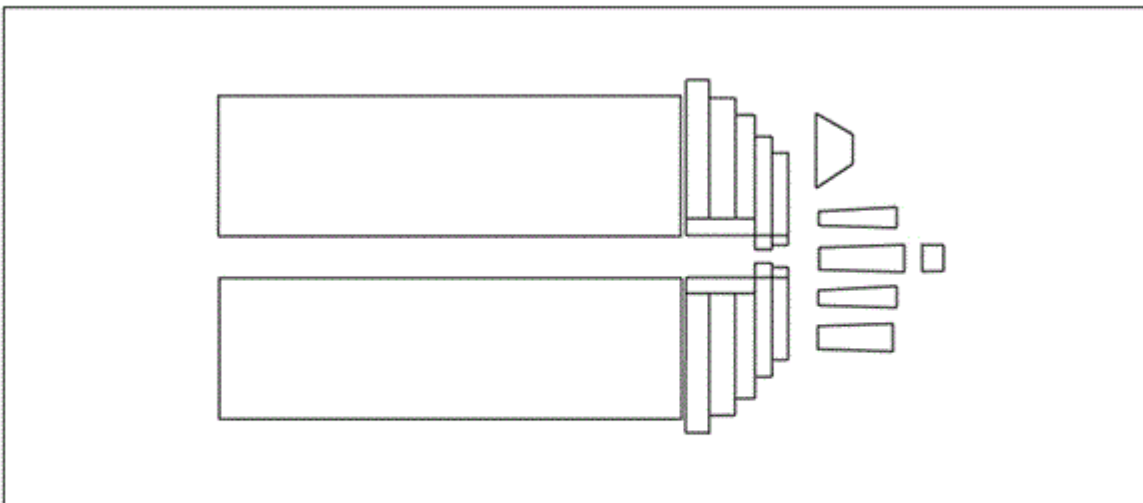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버-1 및 부도 버-2와 같다.
 - 가) 날개그물(오비기·수비: 어군을 위협하여 자루그물 속으로 몰아넣는 역할을 하며 그물코가 큰 것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 나) 자루그물은 여자망이나 그 밖의 직망과 세목망으로 된 어망을 부착한 어구
 - 다) 전개판 등 좌우 전개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어구
-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본선, 어로보조선, 가공 및 운반 겸용선이 선단을 이루어 1)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멸치를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버-3과 같다.
 - 가) 본선 2척이 그물을 나누어 싣고 항해하다가 자루그물부터 투망한다.
 - 나) 본선 간의 간격을 벌리면서 날개그물을 투망한 후 끌줄 1가닥씩을 잡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중충 또는 표충을 예망(저충을 예망해서는 안 된다)한다.
 - 다) 예망이 끝나면 본선에서는 각각 날개그물을 감아 들이고 자루그물을 양망한다.
 - 라) 어로보조선은 어군을 탐색하거나 본선의 조업활동을 보조할 수 있다.

기선권현망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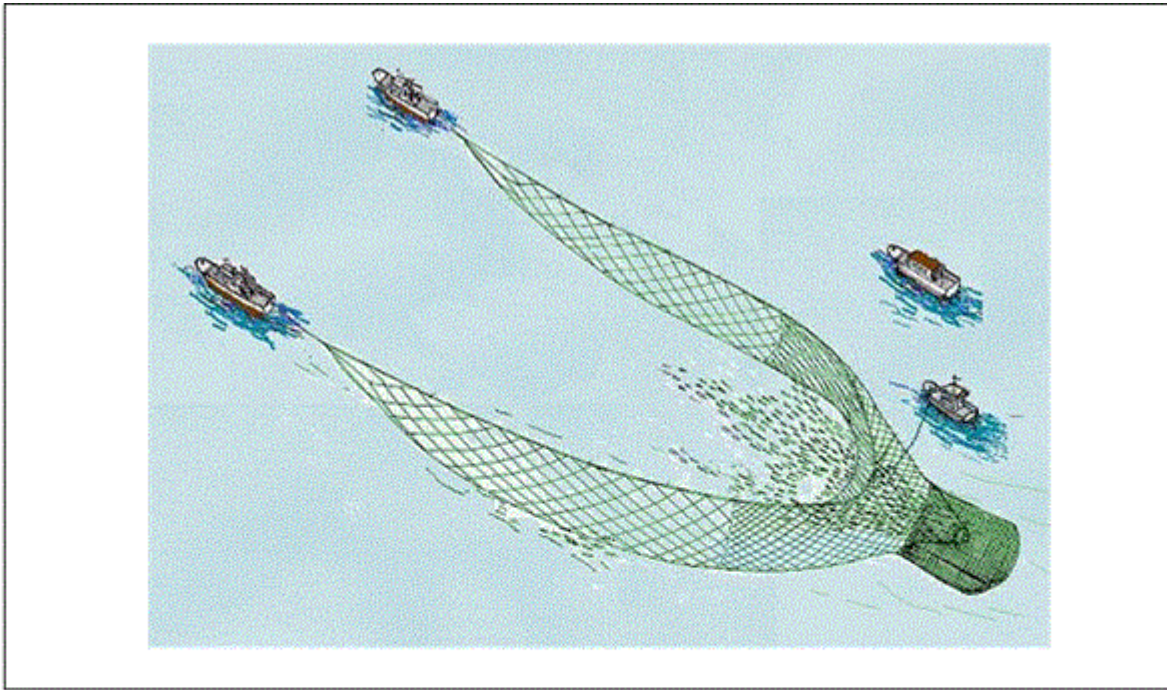
[부도 바-2]

기선권현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바-3]

기선권현망 조업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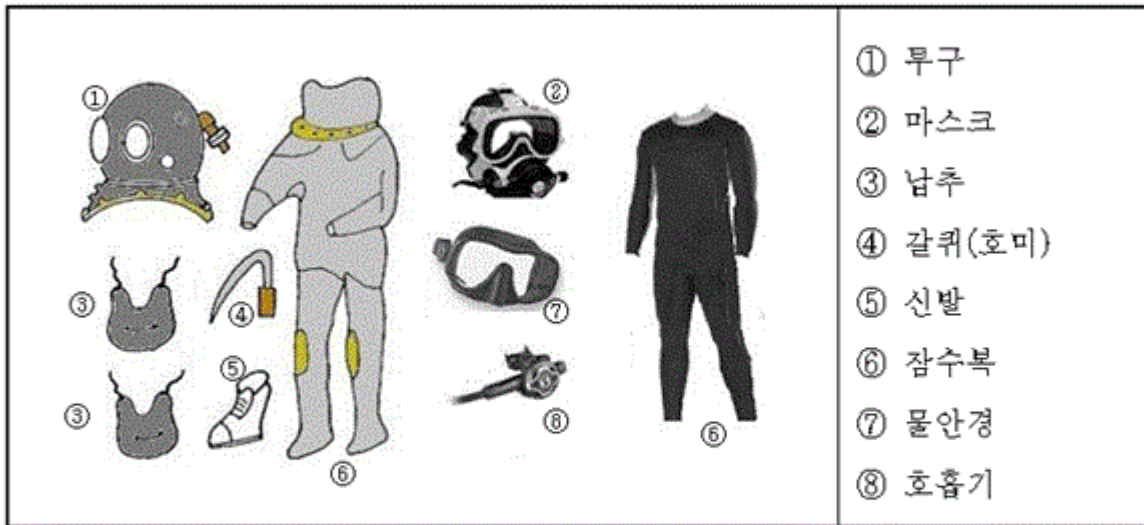
서. 잠수기어업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장비 겨냥도는 부도 서-1과 같다.
 - 가) 잠수복, 투구, 마스크, 물안경, 낚, 신발, 공기압축기(컴프레서), 공기공급용 호스 등의 장비와 갈퀴, 칼, 망태 등으로 구성된 어구
 - 나) 잠수부와 연결하는 호스의 길이는 1인당 150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 다) 배 길이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선수부(船首部) 좌우 현(舷)의 외판(外板)은 노란색으로 칠해야 한다.
-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과 잠수부 1명이 1)에 적합한 장비와 어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패류 등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서-2와 같다.
 - 가) 잠수부는 어선에서 호스를 통해 공기를 공급받으면서 갈퀴나 칼 등을 사용하여 해저 바닥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다.
 - 나) 호스가 연결된 투구, 마스크 또는 물안경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 다) 분사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시·도지사가 해당 관할 수역의 어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는 수역의 범위, 분사기를 사용하여 포획할 수 있는 매물성 수산동물[개조개·키조개·왕우럭·코끼리조개·개불·바지락(「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종류, 분사기의 마력(8마력 이하로 한정한다) 및 노즐 규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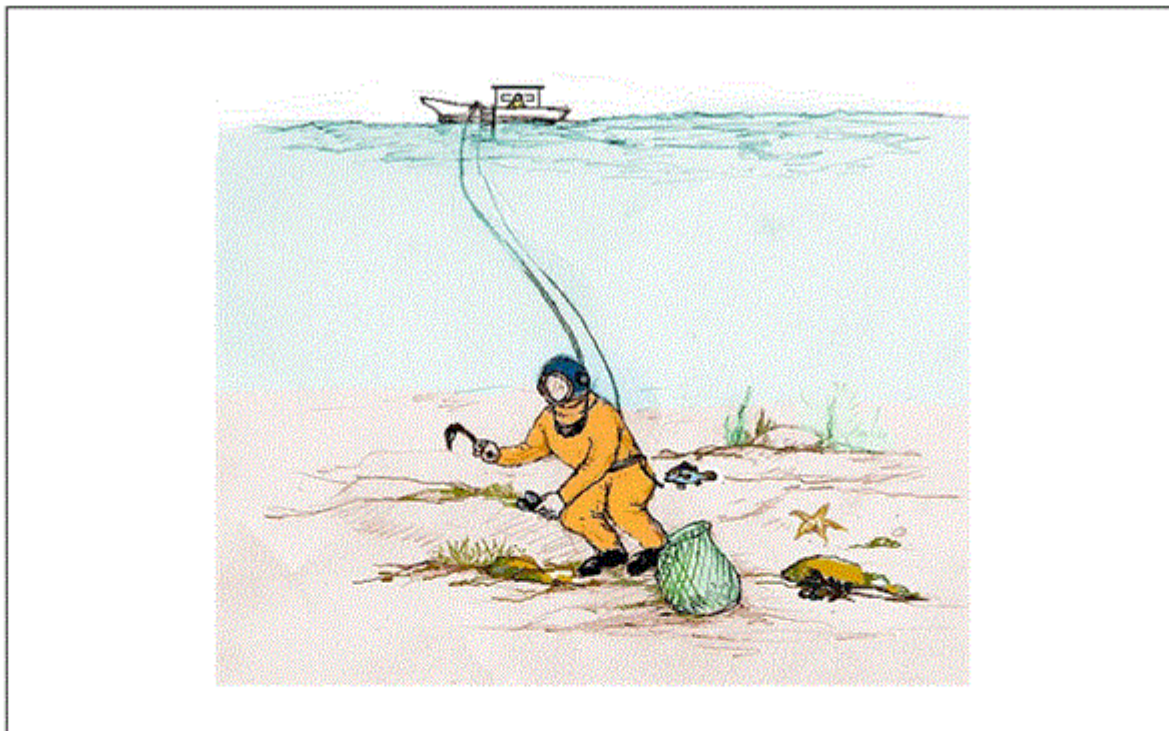
[부도 서-1]

잠수기어업 장비 겨냥도



[부도 서-2]

잠수기어업 조업모식도



3. 연안어업의 어구의 규모·형태·재질·사용량 및 사용방법

가. 연안개량안강망어업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가-1 및 부도 가-2와

같다.

가)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나) 자루그물 입구 상부에는 뜰과 같은 부력재를 달고, 하부에는 밧줄과 같은 침강재를 달며, 양쪽 측면에는 범포를 달아 그물이 수직과 좌우로 전개되도록 구성된 어구. 다만, 연안안강망(낭장망 또는 주목망)어업에서 개량안강망어업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범포를 대신하여 말뚝 또는 뽕침대를 전개장치로 사용할 수 있다.

다) 자루그물 내부에 어류를 분류하는 그물을 여러 개 부착할 경우, 부착한 어류 분류망에는 어류 탈출구를 설치해야 하며 그물코의 크기는 별표 8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라) 5통 이내의 어구(어구용 닻을 포함한다)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1)에 적합한 어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간 수산동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가-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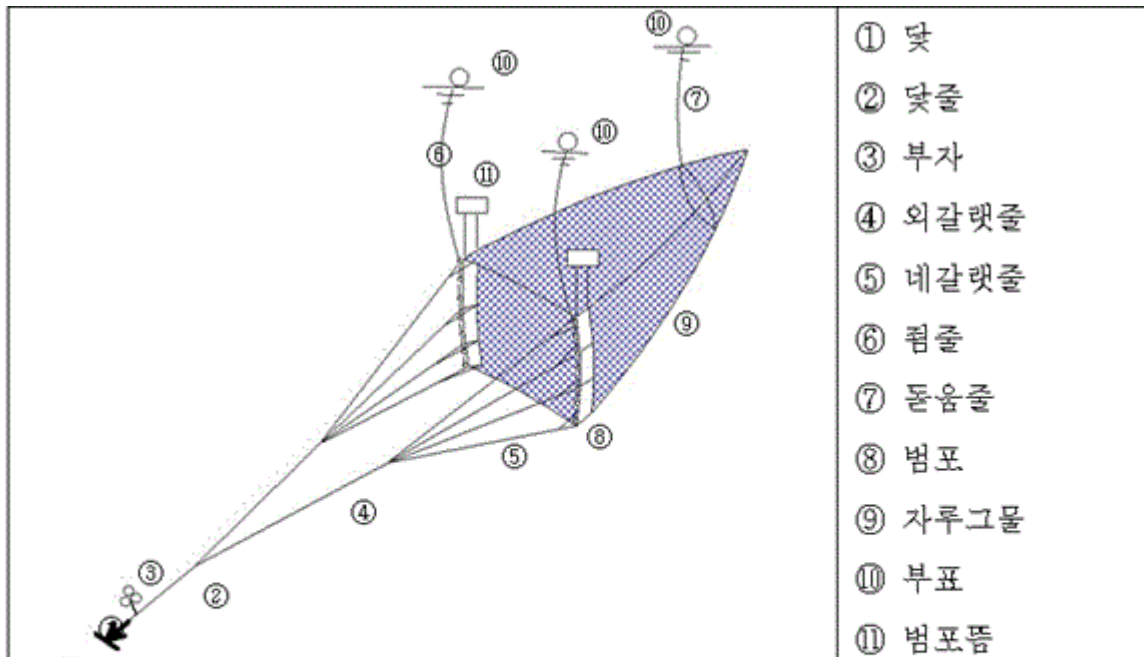
가) 자루그물을 해저에 닻으로 고정 부설하여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간 수산동물을 포획한다. 다만, 연안안강망(낭장망, 주목망)어업에서 개량안강망어업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3개 이내에서 부설할 수 있다.

나) 어구 고정용 닻, 자루그물, 범포(쫑대 또는 뽕침대)를 투하한 뒤 줍줄, 부표 순서로 투망한다.

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투망의 역순으로 양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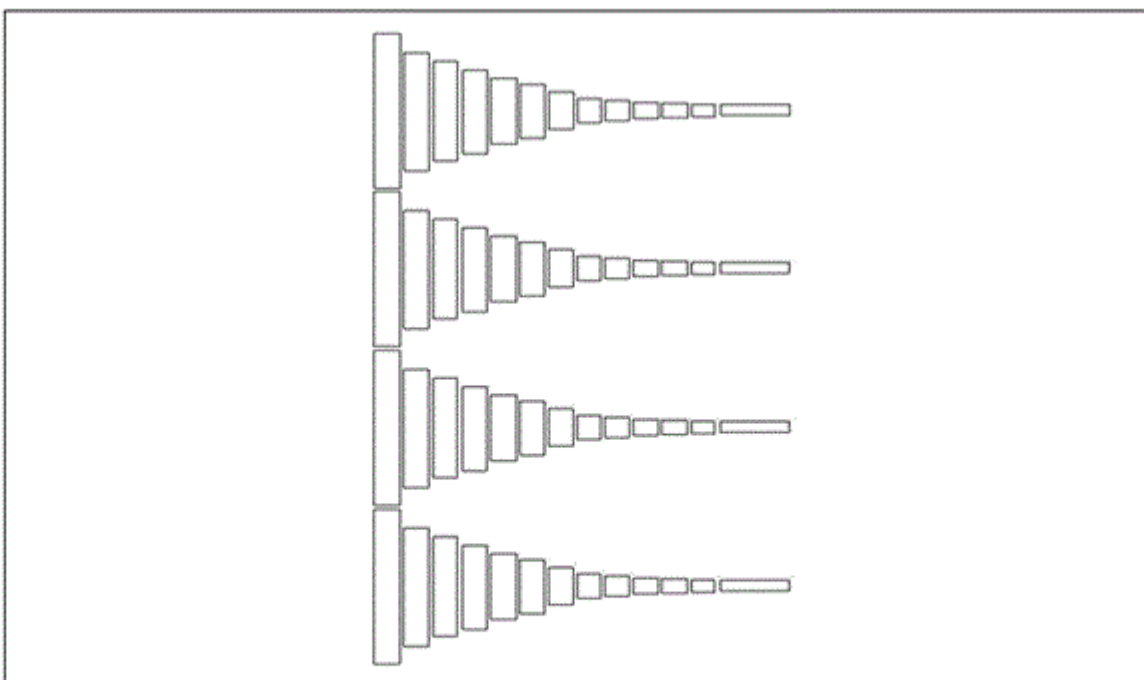
[부도 가-1]

연안개량안강망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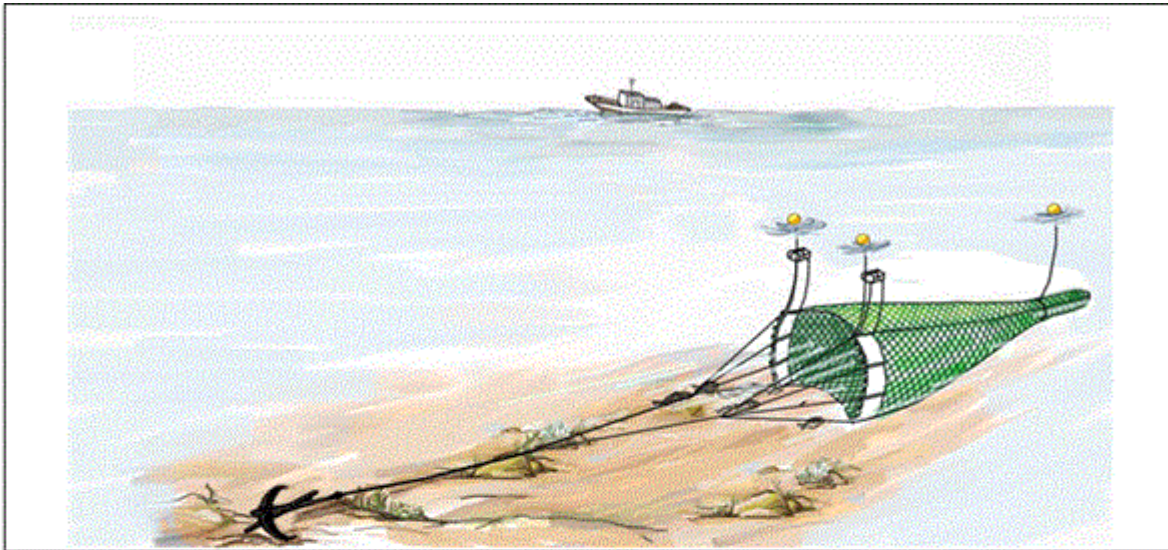
[부도 가-2]

연안개량안강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가-3]

연안개량안강망 조업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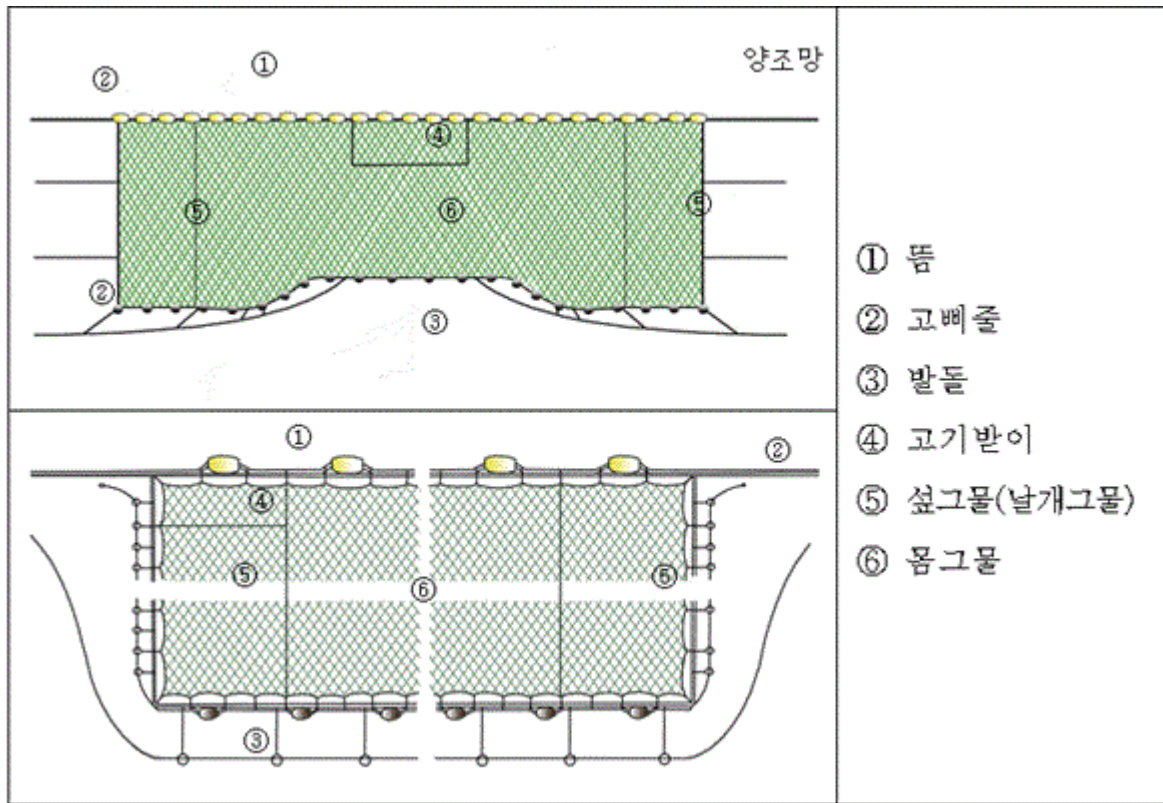


나. 연안선망어업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나-1 및 부도 나-2와 같다.
 - 가) 긴 네모꼴 모양으로 쇠그물, 몸그물, 고기받이로 구성된 어구
 - 나) 상부에는 뜸과 같은 부력재를 달고, 하부에는 발돌과 같은 침강재를 달아 어구가 수직으로 전개되도록 구성된 어구
-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본선 또는 본선과 부속선으로 1)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수산동물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둘러쳐서 잡는 것으로서 어구를 예망해서는 안 되며, 조업모식도는 부도 나-3과 같다.
 - 가) 본선에서 고배줄과 줍줄이 연결된 부표를 투하하고 원을 그리듯이 어구를 투망한 후 부표가 있는 곳으로 되돌아와 부표를 다시 건져 올려 고배줄과 줍줄을 감으면서 그물을 양망한다.
 - 나) 본선은 부속선에 고배줄과 줍줄의 끝을 넘겨주고 원을 그리듯이 어구를 투망한 후 부속선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와 고배줄과 줍줄을 넘겨받아 감으면서 그물을 양망한다. 이 경우 부속선은 본선에서 넘겨받은 고배줄과 줍줄을 잡고 본선의 투망을 보조하다가 본선과 인접하게 되면 본선과 같이 어구의 일부를 양망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나, 부속선에는 어구를 실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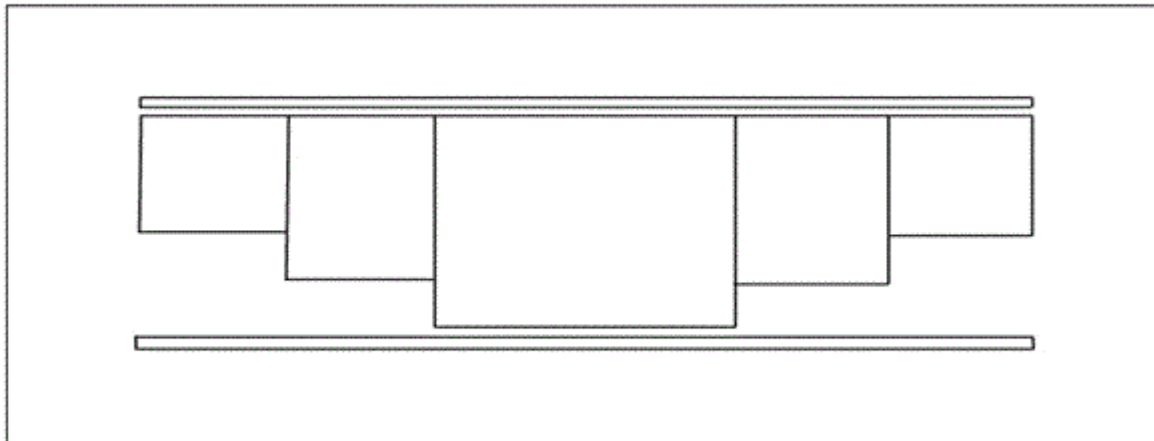
[부도 나-1]

연안선망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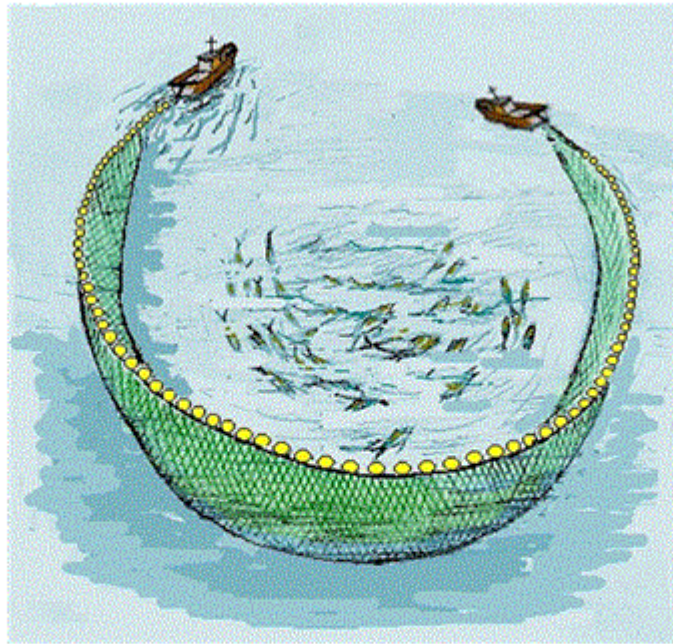
[부도 나-2]

연안선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나-3]

연안선망 조업모식도



다. 연안통발어업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다-1 및 부도 다-2와 같다.
 - 가) 일정한 형태의 고정된 테 위에 그물 등을 씌운 것으로서 윗면 또는 옆면에 입구가 있는 어구
 - 나) 합성수지·철사·나무 등으로 제작된 통발인 경우에는 그물코의 모양이 정사각형으로 제작된 어구
 - 다) 합성수지로 된 긴 원통의 한쪽 또는 양쪽에 깔때기 모양의 입구가 있는 어구
 - 라) 가로·세로·높이(원통형인 경우 지름)의 길이를 각각 120센티미터 이하로 제작한 어구
 - 마) 허가받은 어선은 다음의 어구량을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수산자원의 보호와 다른 어업과의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다음의 어구량 및 통발 간격 범위에서 해당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구량 및 통발 간격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어구량 및 설치 간격 범위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어구량 및 설치 간격

- (1) 통발의 개수는 2,500개. 다만, 동해안은 4,000개로 한다.
- (2) 통발의 설치 간격은 10미터 이내. 다만, 동해안은 40미터 이내로 한다.
- (3) (1)에도 불구하고 장어를 주로 포획하려는 경우에는 통발의 개수는 3,200개, 통발의 설치 간격은 10미터 이내로 한다.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1)에 적합한 어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발 속으로 들어간 수산동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다-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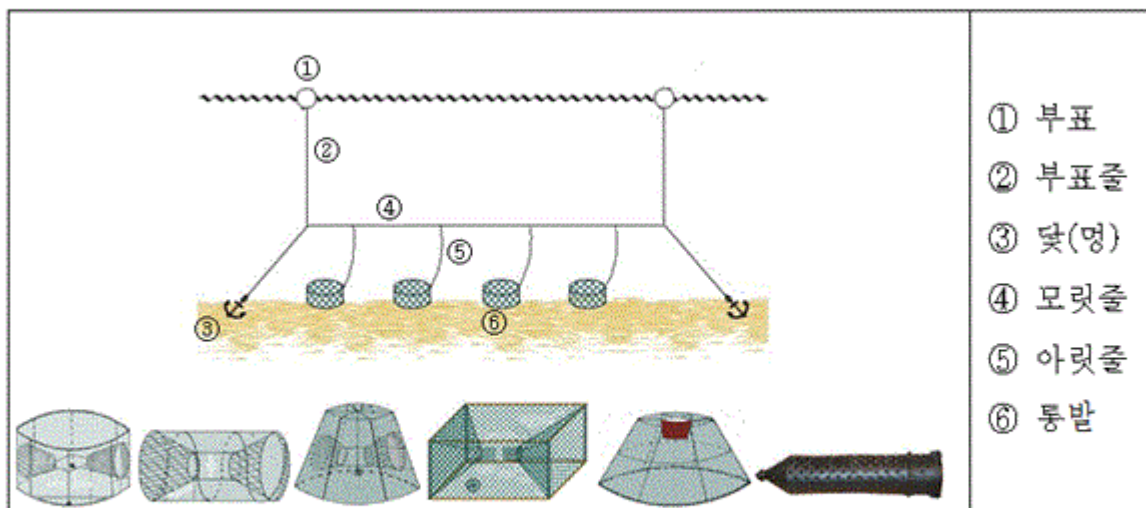
가) 통발 1개씩을 부표에 직접 달아 부설하거나 여러 개의 통발을 모릿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달아 부설한다.

나) 부표, 닻(명), 통발이 달린 모릿줄, 닻(명), 부표 순서로 투승한다.

다) 어구를 일정 시간 동안 잠기게 한 후 양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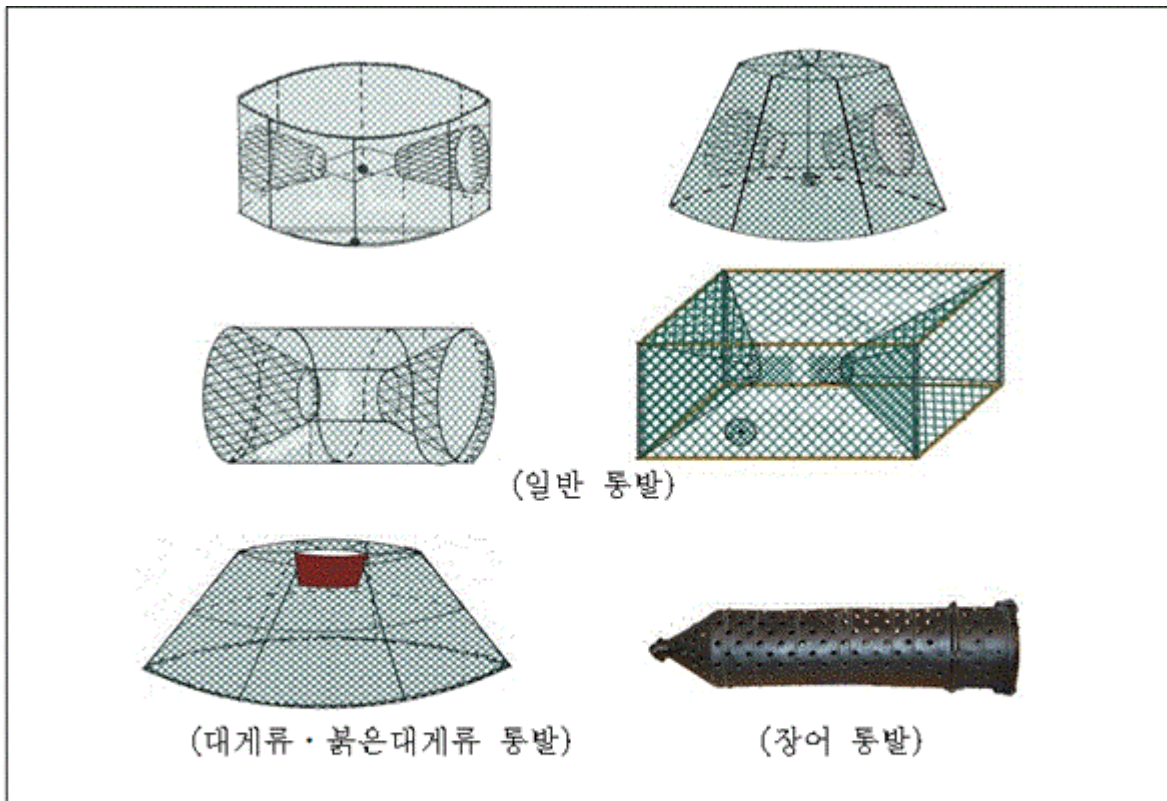
[부도 다-1]

연안통발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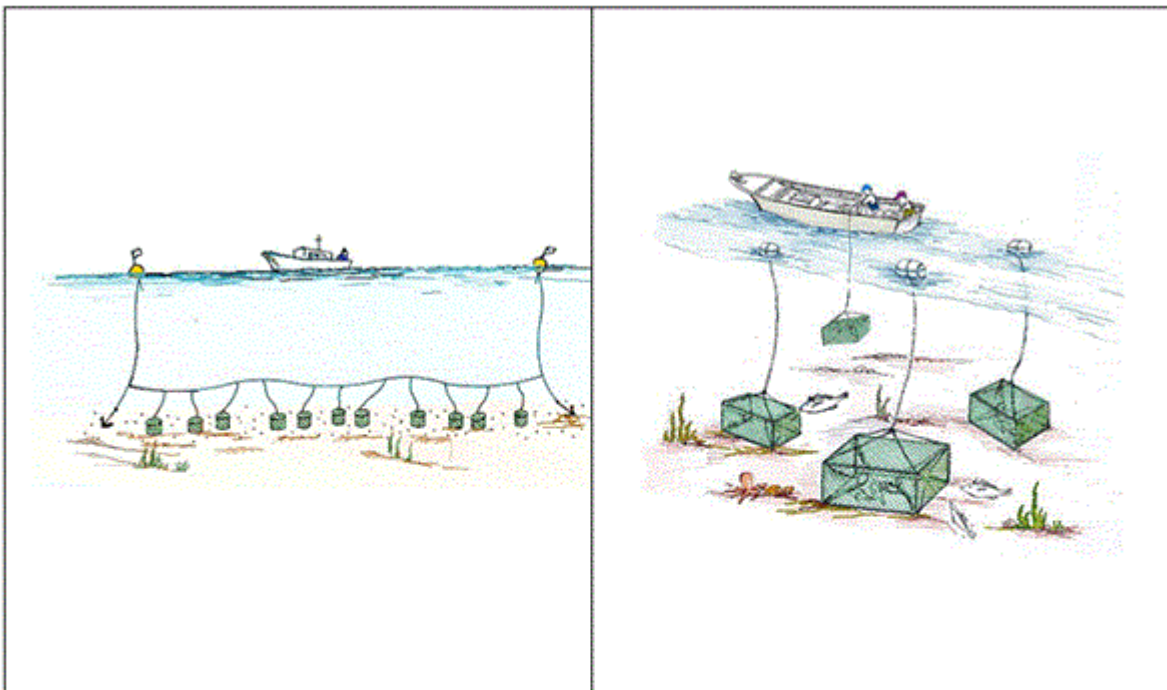


[부도 다-2]

연안통발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다-3]

연안통발 조업모식도

라. 연안조망어업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라-1 및 부도 라-2와 같다.

가)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나) 날개그물 앞쪽 끝에 갯대를 부착하고 갯대와 갯대 사이에는 대나무나 쇠파이프 등의 막대를 부착하여 어구의 입구가 좌우로 벌어지게 구성된 어구

다) 망 입구에 설치한 막대의 길이가 12미터 이하인 어구

라) 막대와 자루그물 입구 사이에 체인을 설치하지 않은 어구

마) 막대의 좌우 갯대(날개그물의 끝을 상하로 벌려주는 철봉이나 나무로 된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썰매판을 부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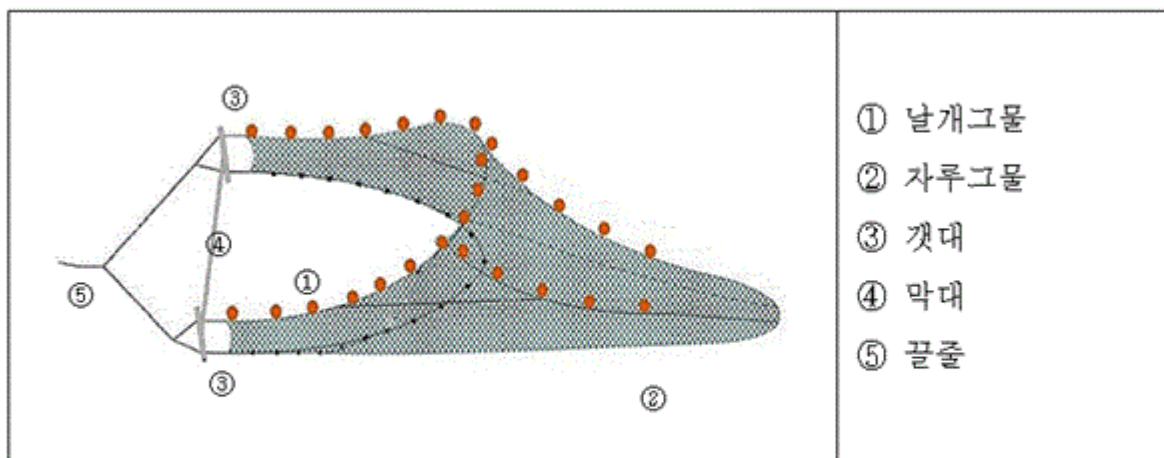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1)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새우류를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라-3과 같다.

가) 현측 또는 선미에서 자루그물부터 투망하고, 1가닥의 끌줄을 내어 준 후 저층을 끌면서 새우류를 포획한다.

나) 예망이 완료되면 끌줄을 감아 들어 막대를 선체에 고정시킨 후 자루그물을 양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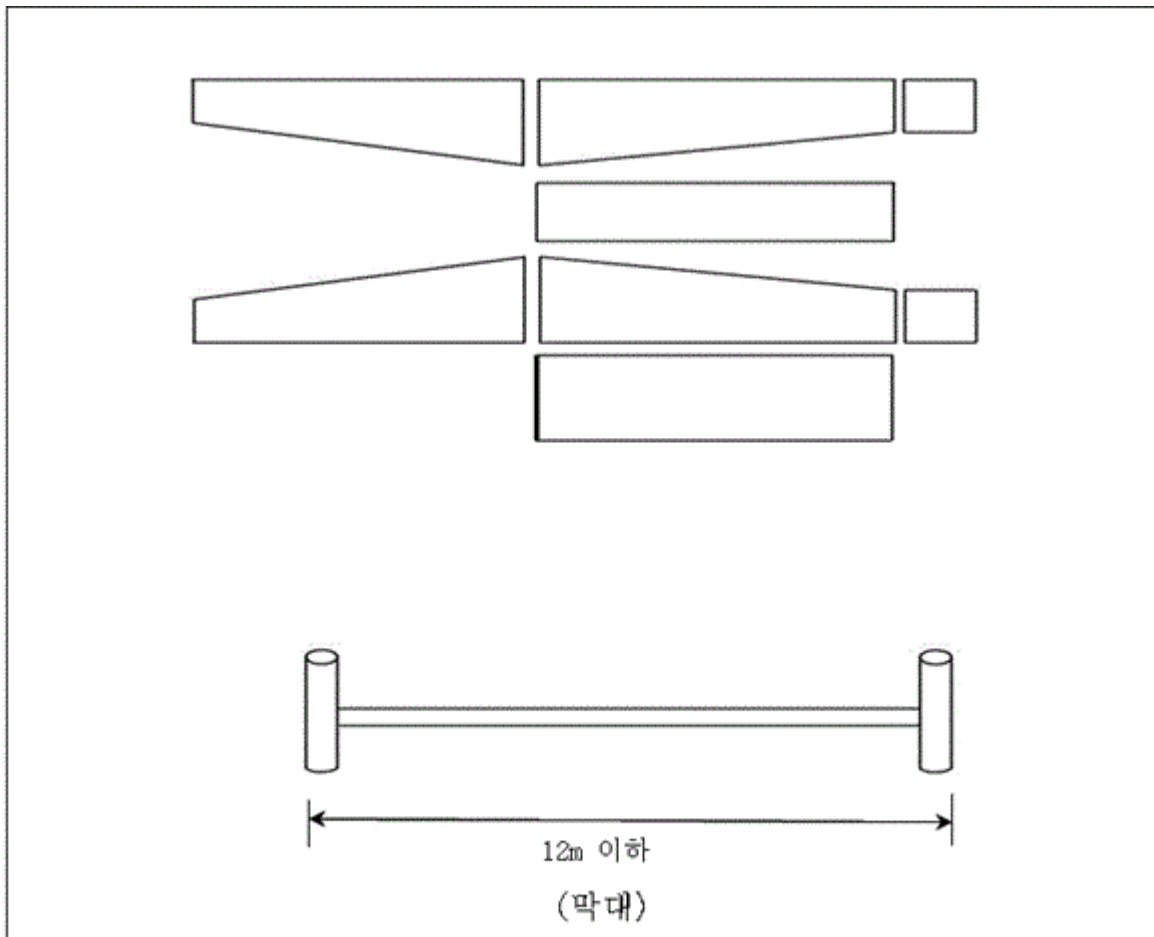
[부도 라-1]

연안조망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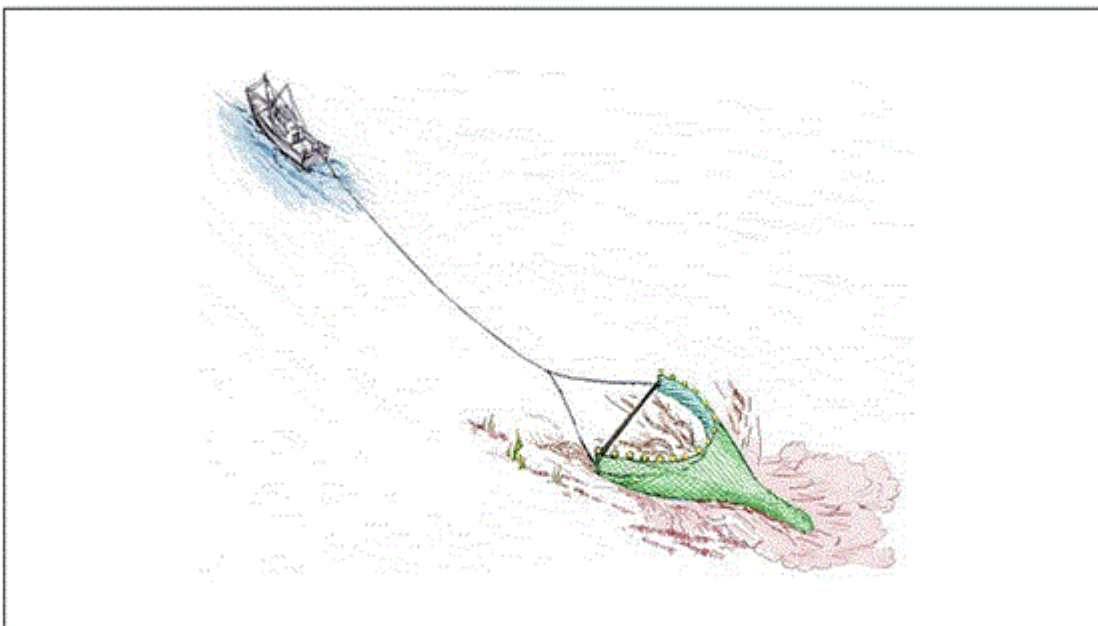
[부도 라-2]

연안조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라-3]

연안조망 조업모식도



마. 연안선인망어업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마-1 및 부도 마-2와

같다.

가)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나) 망구전개판을 부착하지 않은 어구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2척으로 1)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멸치를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마-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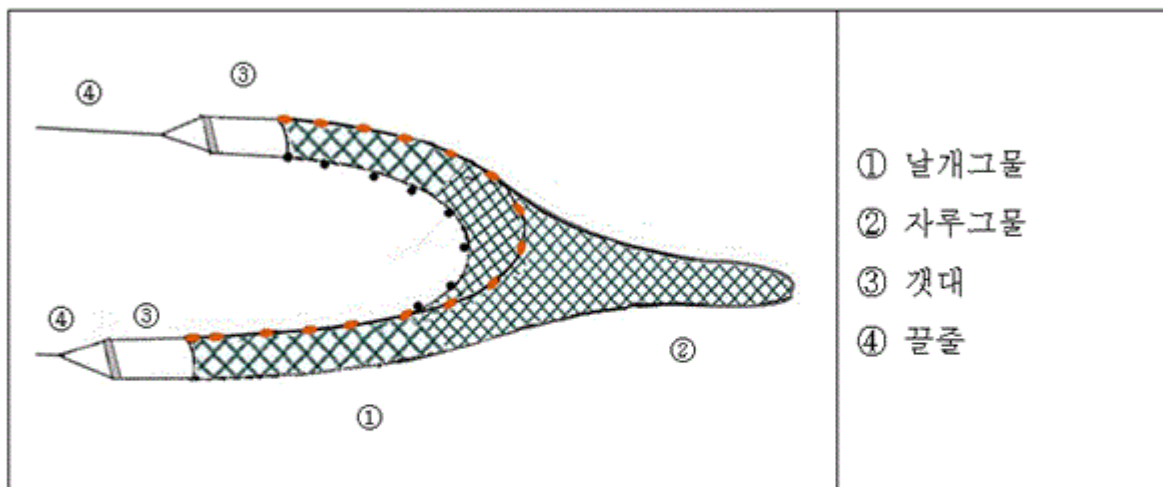
가) 주선은 선미에서 자루그물, 날개그물, 끌줄 순서로 투망한다.

나) 투망이 완료되면 종선은 주선으로부터 끌줄 1가닥을 넘겨받아 선체에 고정시키고, 주선과 종선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표층 또는 중층을 예망(저층을 예망해서는 안 된다)한다.

다) 예망이 완료되면 주선은 종선으로부터 끌줄을 넘겨받아 양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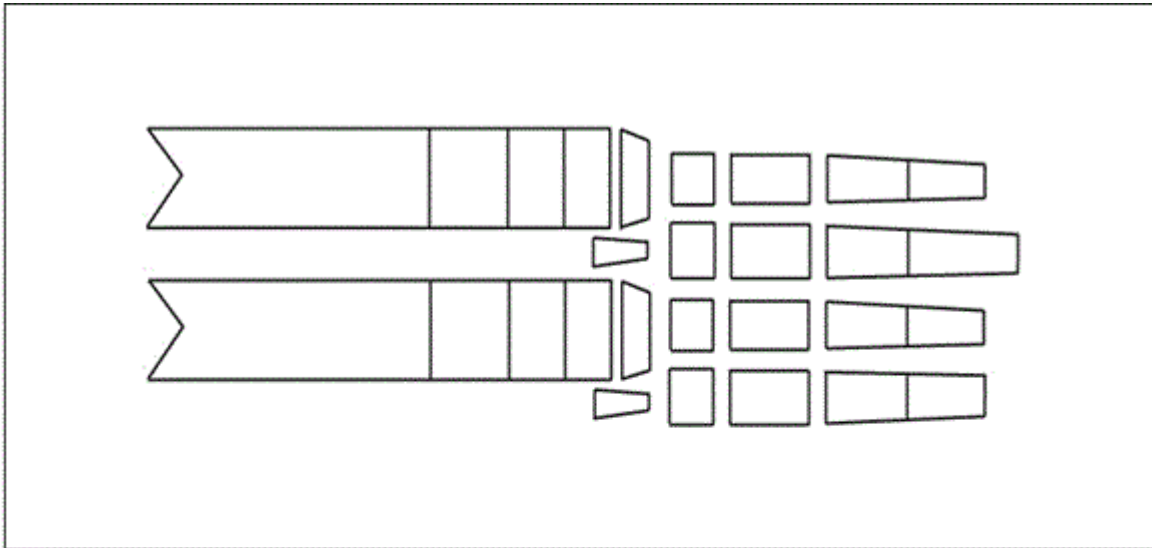
[부도 마-1]

연안선인망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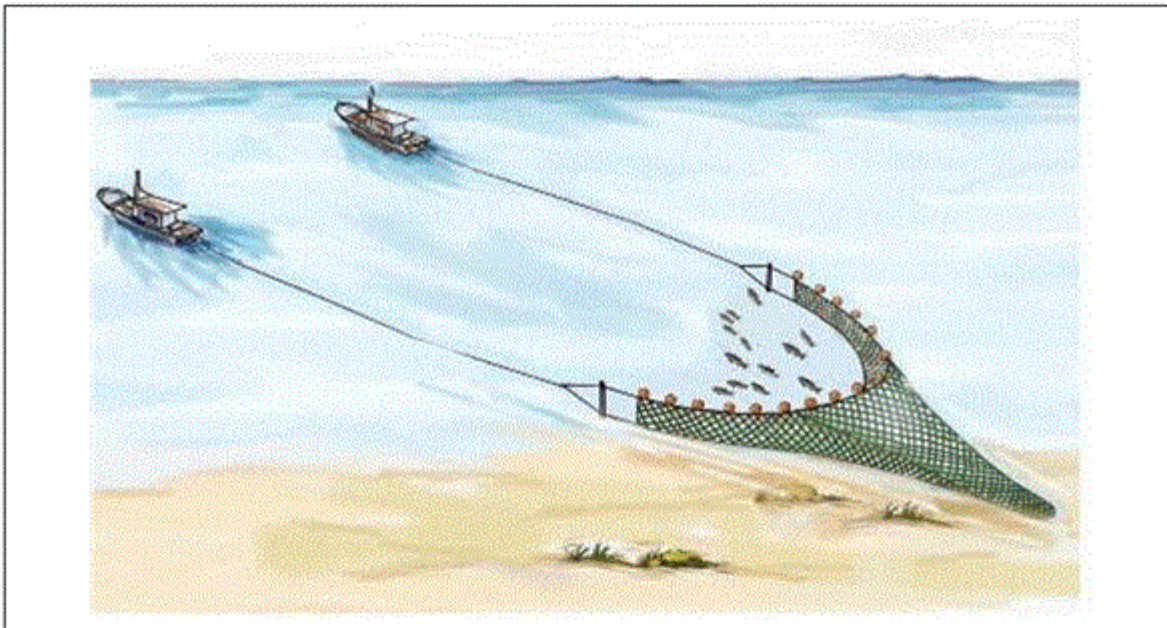


[부도 마-2]

연안선인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마-3]

연안선인망 조업모식도**바. 연안자망어업**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바-1 및 부도 바-2와 같다.

가) 직사각형의 띠 모양의 그물에 상부에는 뜸과 같은 부력재를 달고, 하부에는 발줄과 같은 침강재를 달아 그물이 수직으로 전개되도록 구성된 어구

나) 홑 그물로 구성된 어구

다) 뽕침대가 있는 경우에는 뽕침대를 뜸줄과 발줄 사이에 수직방향으로

부착한 어구

라) 허가받은 어선은 다음의 어구량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수산자원의 보호와 다른 어업과의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다음의 어구량 범위에서 해당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구량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어구량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 어구량 |
|--|
| (1) 뱀침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인천광역시·경기도 해역에서 꽃게를 포획할 목적으로 뱀침대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1만2천미터 [동해안(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과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북의 해역을 말한다)에서는 11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0일까지 3만5천미터]. 다만, 어선에는 3천미터 이내의 어구를 따로 실을 수 있다. |
| (2) 뱀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인천광역시·경기도 해역에서 꽃게를 포획할 목적으로 뱀침대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1천5백미터 이내 |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1)에 적합한 어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그물에 낚히거나 얹히도록 잡는 것으로 조업모식도는 부도 바-3과 같다. 다만, 수산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뱀침대를 부착한 경우에는 수산동물을 그물에 갇히도록 포획할 수 있다.

가) 부표, 닻(명), 그물, 닻(명), 부표 순서로 투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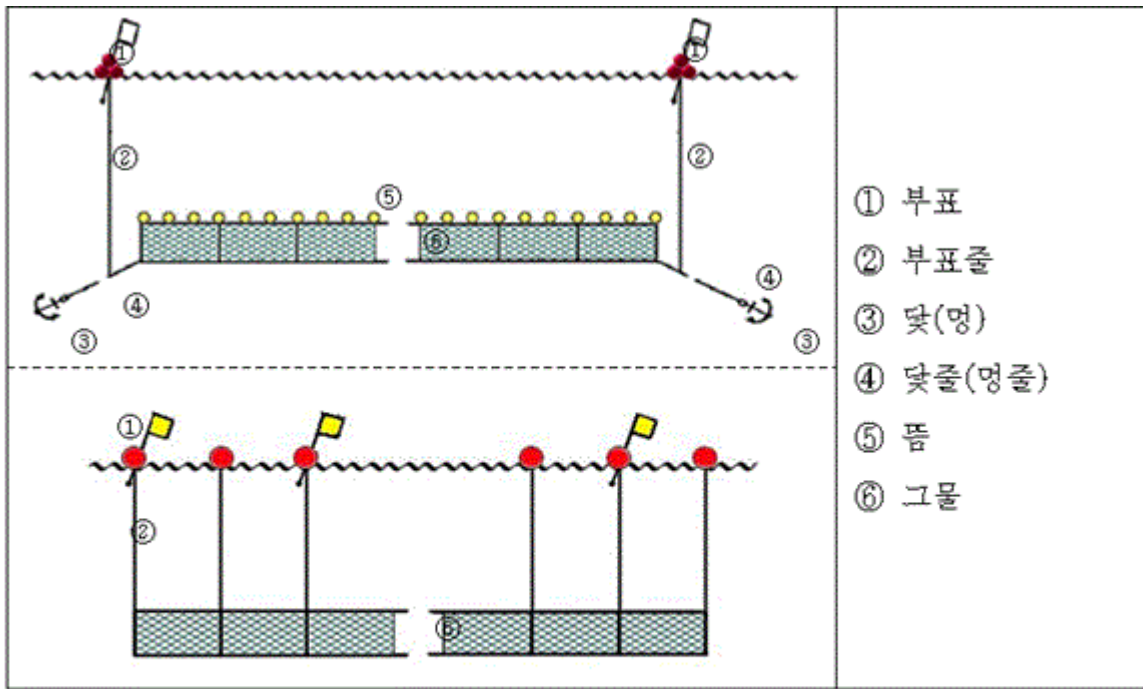
나) 어구를 일정 시간 동안 잠기게 한 후 양망한다.

다) 표층, 중층, 저층에 고정 부설하거나 해류나 조류를 따라 흘러가도록 부설한다. 다만, 해류나 조류를 따라 흘러가도록 어구를 부설할 경우에는 닻(명)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라) 어구를 예망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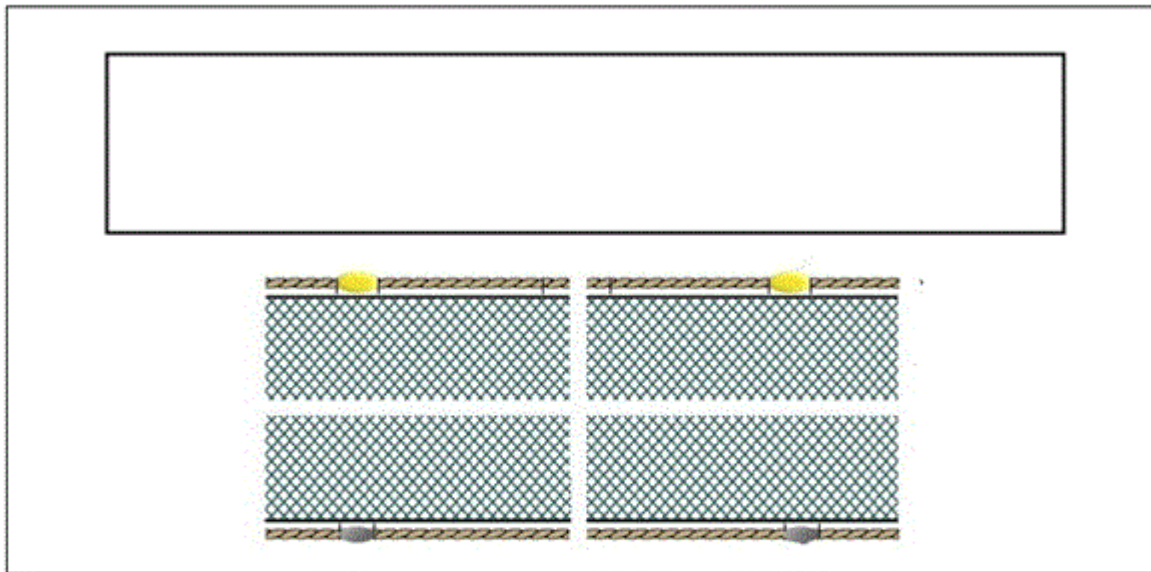
[부도 바-1]

연안자망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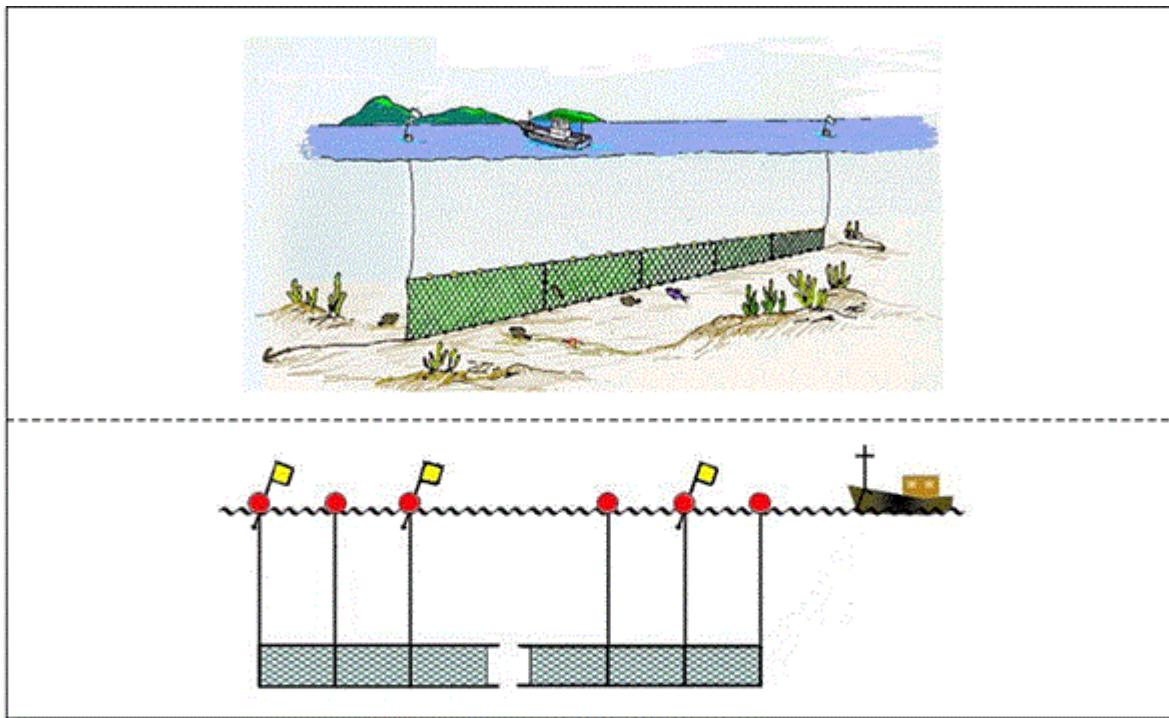
[부도 바-2]

연안자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바-3]

연안자망 조업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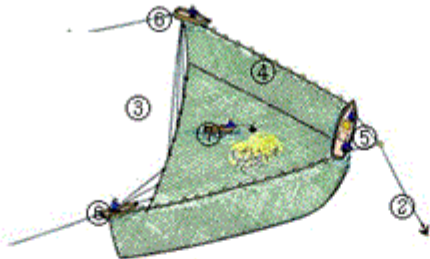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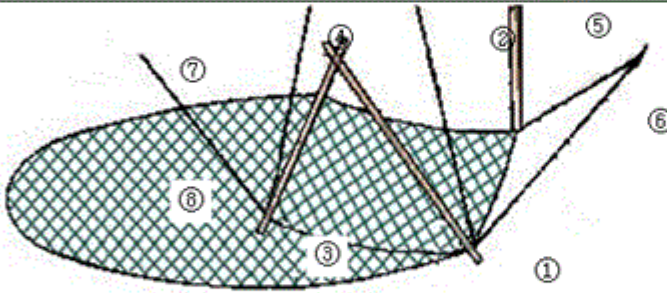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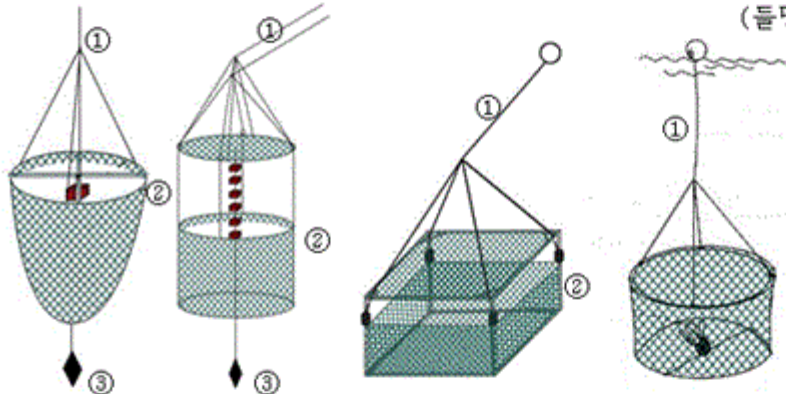
사. 연안들망어업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사-1 및 부도 사-2와 같다.
 - 가) 그물에 테가 없는 사각형 모양 등의 그물과 돌움줄로 구성되거나 그물의 위 언저리에 테가 있는 형태와 돌움줄로 구성된 어구(들망)
 - 나) 기다란 챗대와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초망)
-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본선 또는 본선과 부속선으로 1)에 적합한 어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들어 올려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사-3과 같다.
 - 가) 물속에 미리 어구를 수평으로 부설하여 수산동물이 어구 위에 오면 어구를 들어 올려 수산동물을 포획한다.
 - 나) 물속에 미리 어구를 부설해 놓고 수산동물을 어구 속으로 유도하여 어구 속으로 들어가면 어구를 들어 올려 수산동물을 포획한다.
 - 다) 야간에는 집어등을 사용한 조업이 가능하다.
 - 라) 어구를 예망해서는 안 된다.

[부도 사-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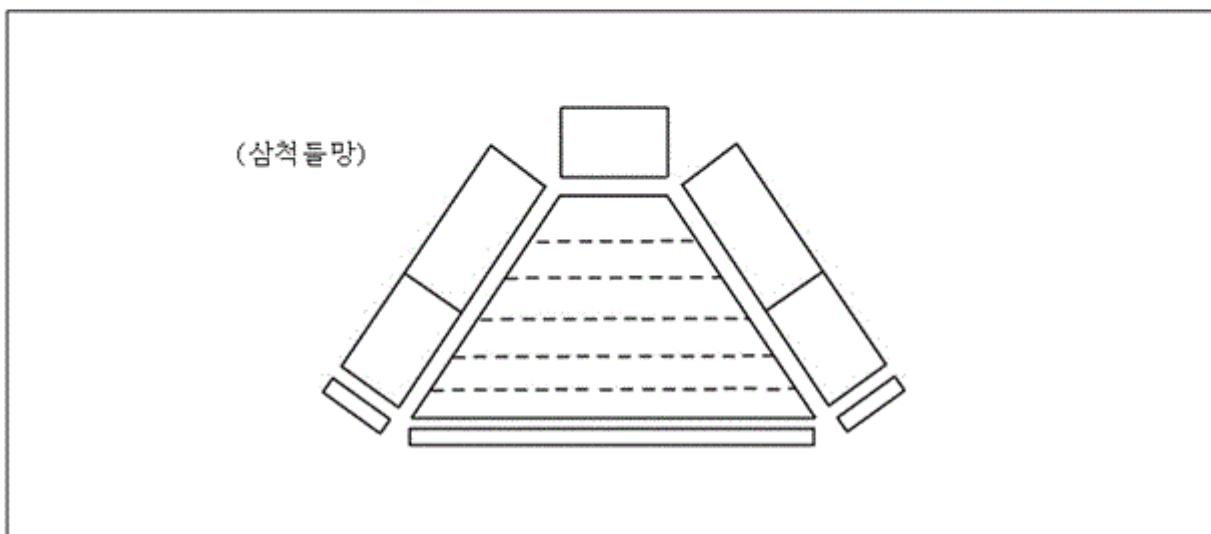
연안들망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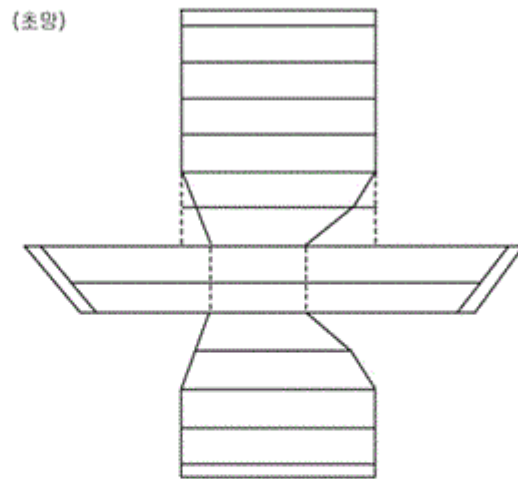
- ① 닻
- ② 닻줄
- ③ 돌움줄

| | |
|---|--|
|  <p>① (삼척들망)</p> | <p>④ 뜬
⑤ 본선
⑥ 부속선
⑦ 불배</p> |
|  <p>(초망)</p> | <p>① 큰챗대
② 큰챗대줄
③ 작은챗대
④ 작은챗대줄
⑤ 콧대
⑥ 앞잡이줄
⑦ 뒷잡이줄
⑧ 자루그물</p> |
|  <p>(들망)</p> | <p>① 뜬줄
② 고정테
③ 추</p> |

[부도 사-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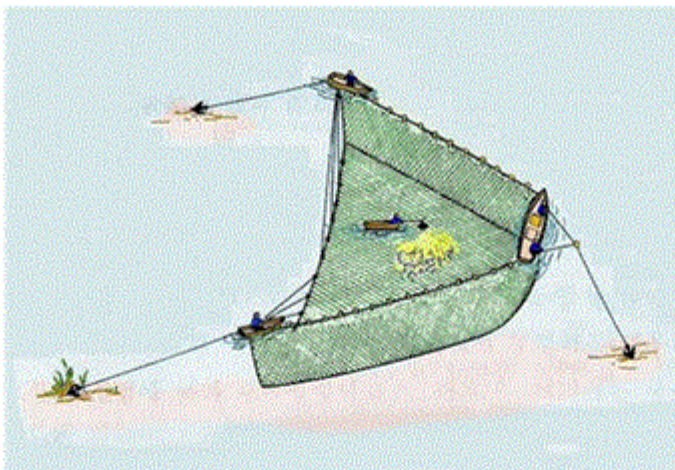
연안들망 표준어구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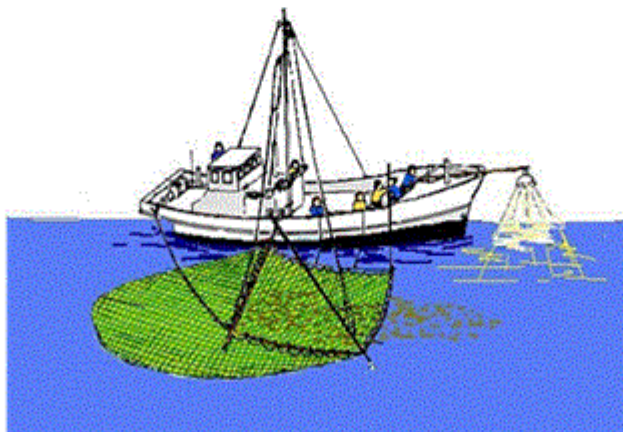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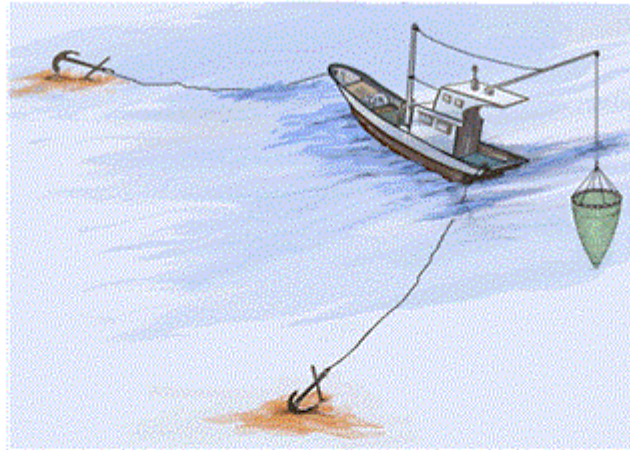
[부도 사-3]

연안들망 조업모식도



(초망)





(들망)

아. 연안복합어업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는 부도 아와 같다.

가) 낚시어구: 주낙, 외줄낚시, 끝낚시, 채낚시 등 낚시로 구성된 어구

나) 문어단지어구: 토기,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단지 형태로 제작된 어구

다) 손퐁치어구: 바다풀 또는 대나무 등을 엮어서 구성된 어구

라) 패류껍질어구: 패류껍질, 토기 또는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패류껍질 형태로 제작된 어구

마) 패류미끼망어구: 미끼를 넣을 수 있는 그물주머니로 구성된 어구

-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1)에 적합한 어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아와 같다.

가) 낚시어구 사용 어법: 1)가)의 어구를 모릿줄, 낚싯대, 조획기 등을 이용하여 수산동물을 낚거나 채어서 포획한다.

나) 문어단지어구 사용 어법: 1)나)의 어구를 모릿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 개를 달아 부설하여 그 속에 들어온 수산동물을 포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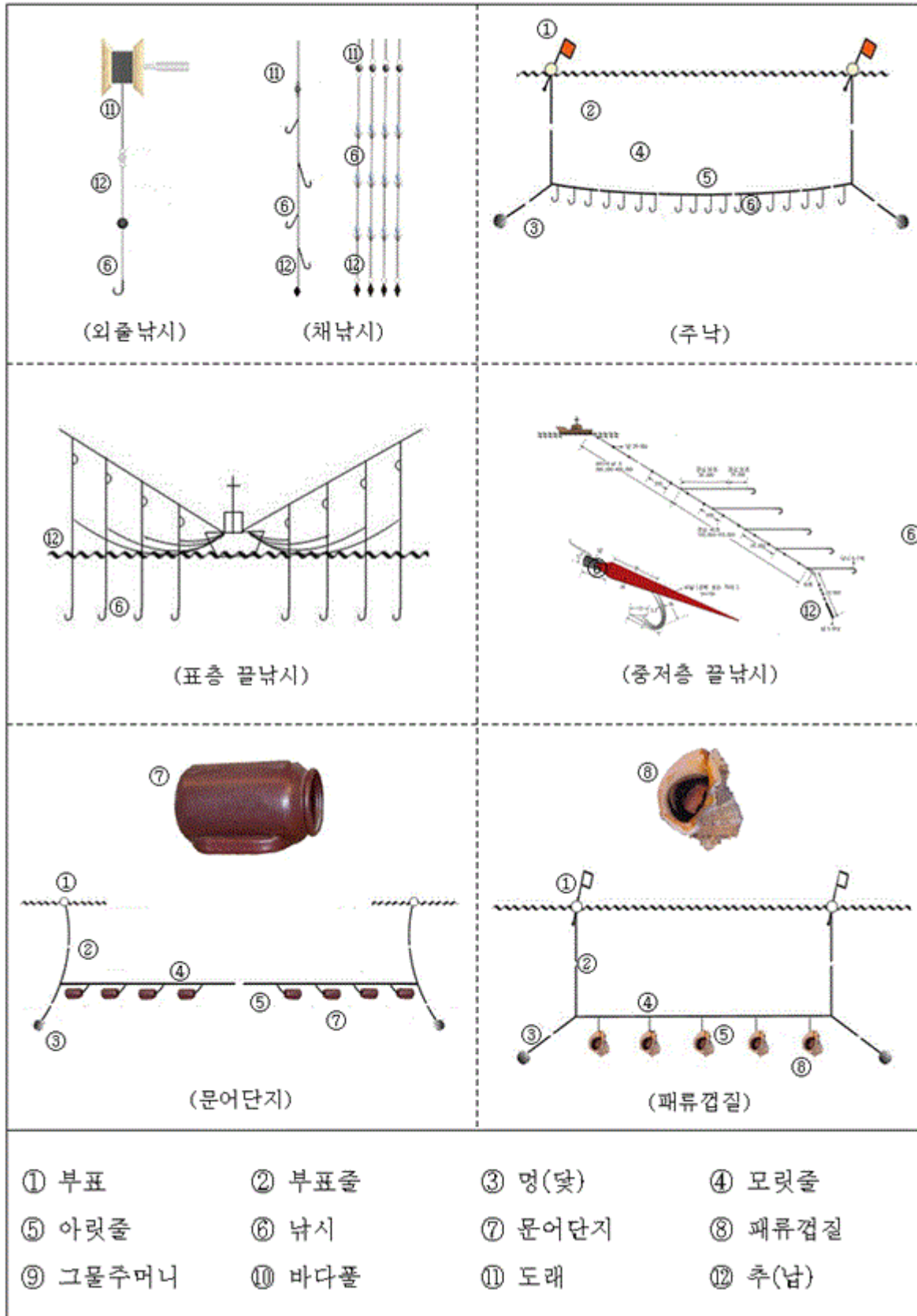
다) 손퐁치어구 사용 어법: 1)다)의 어구를 퐁치 산란장에 띄워 놓았다가 퐁치가 모이면 손이나 족대그물로 퐁치를 포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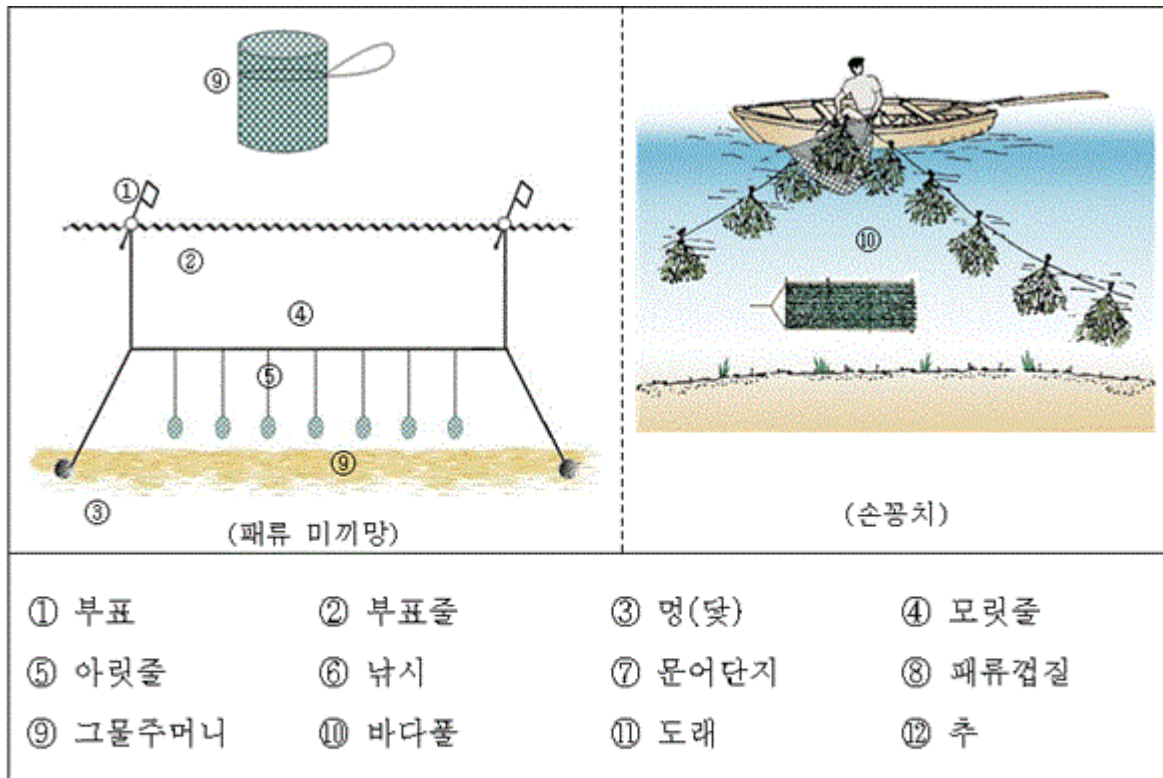
라) 패류껍질어구 사용 어법: 1)라)의 어구를 긴 모릿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 개를 달아 물속에 부설하여 그 속에 들어온 수산동물을 포획한다.

마) 패류미끼망어구 사용 어법: 1)마)의 어구를 모릿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 개를 달아 물속에 부설하여 미끼주머니에 달라붙은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으로 미끼를 넣은 그물주머니의 입구가 닫혀진 상태에서 패류가 부착되도록 해야 한다.

[부도 아]

연안복합어업 어구 겨냥도 및 조업모식도





4. 구획어업의 어구의 규모·형태·재질·사용량 및 사용방법

가. 건간망어업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가-1 및 부도 가-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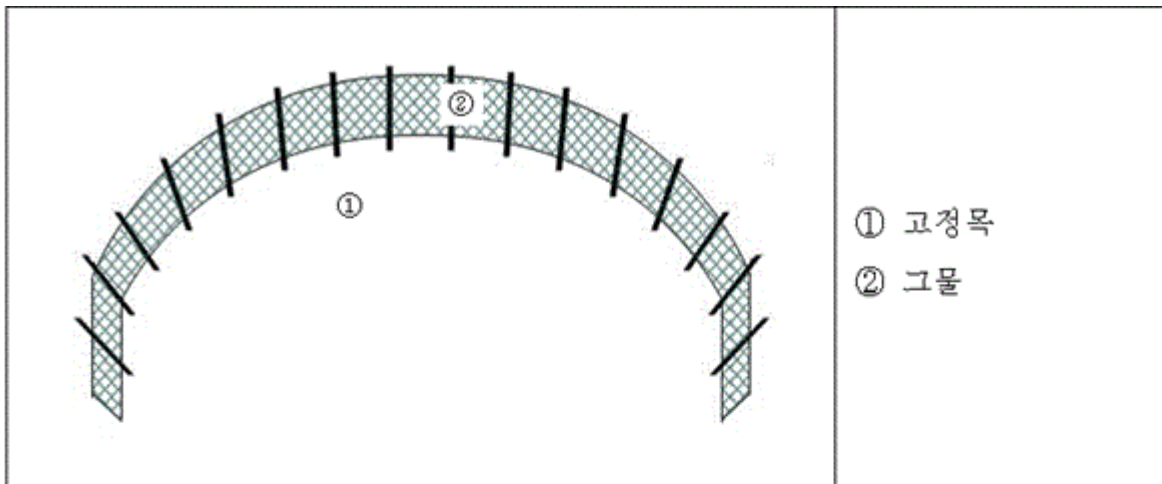
- 가) 여러 개의 고정목을 해저에 박고 그물을 병풍처럼 부착한 어구
- 나) 병풍처럼 쳐진 그물에 고깔 형태의 그물을 부착할 수 있다.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에 적합한 어구 1통을 허가된 구획 안에 부설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가-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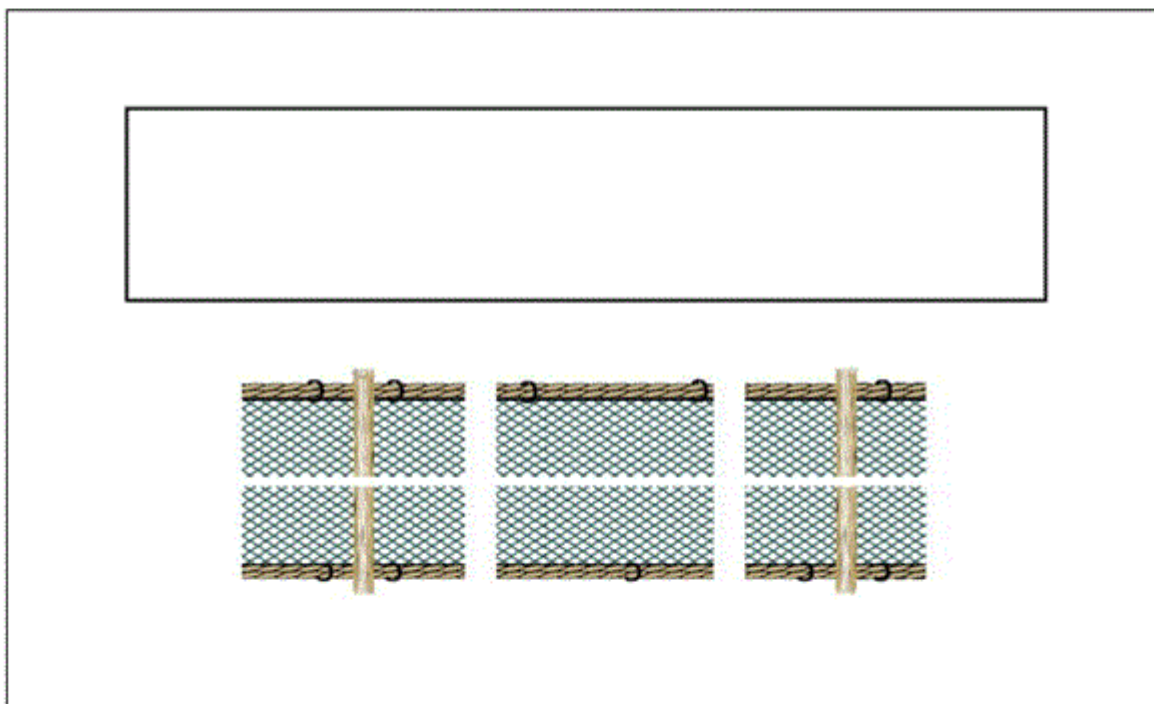
- 가) 간조 시 바닥이 드러나거나 수심이 얇은 곳에 활, 반원, 원 등의 모양으로 고정목을 부설하고 고정목에 그물을 설치한다.
- 나) 밀물 때 조류를 따라 들어온 수산동물이 썰물 때 그물에 갇히게 수산동물을 포획한다.

[부도 가-1]

건간망 어구 겨냥도 및 조업모식도



[부도 가-2]

건망 표준어구 구성도

나. 건망어업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나-1 및 부도 나-2와 같다.

가) 길그물(어군의 통로를 차단하여 어군을 통그물로 유도하기 위한 그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통그물(길그물의 바닷쪽 끝에 설치되어 어군을 가두어 두기 위한 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된 어구

나) 통그물은 헛통(그물로 유도된 어군이 1차적으로 머무르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원통으로 구성된 어구

다) 나)의 원통 입구(안)에 비탈그물(헛통에 있는 어군을 원통으로 유도하는 경사진 통로를 말한다)을 부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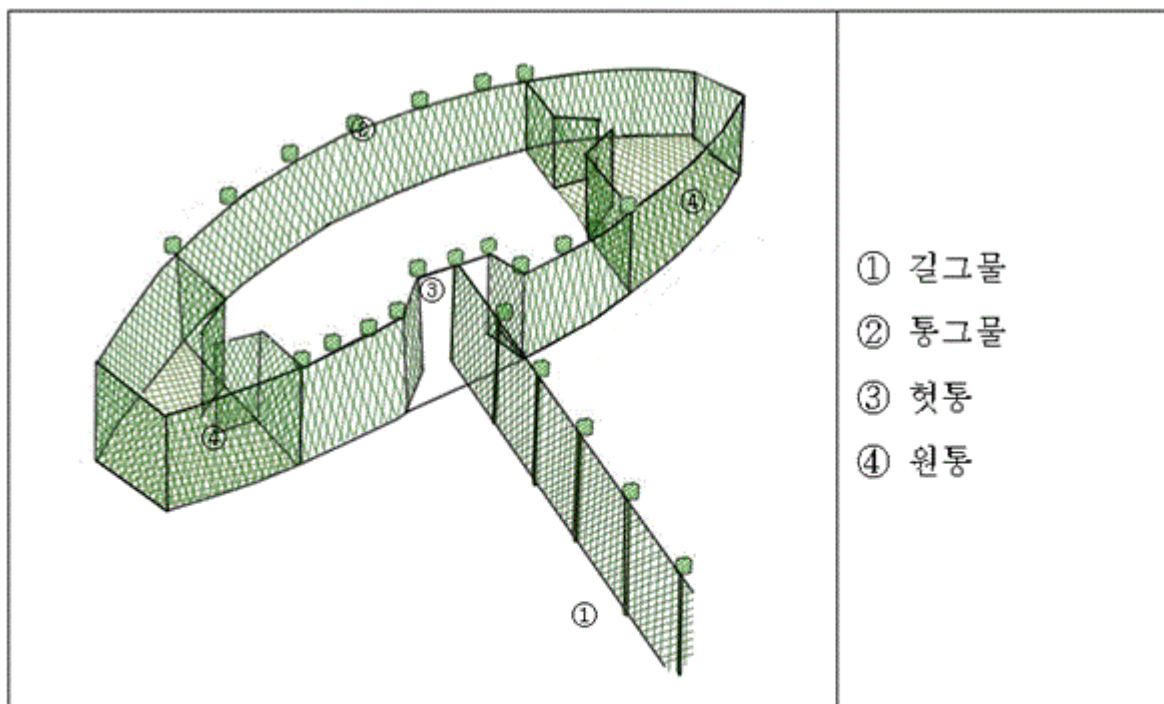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에 적합한 어구 1통을 허가된 구획 안에 부설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은 부도 나-1과 같다.

가)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띠 모양의 길그물을 설치하고, 길그물의 한쪽 끝에 통그물을 설치한다.

나) 통그물의 원통을 한쪽부터 들어 올려 원통의 한쪽으로 수산동물을 몰아서 포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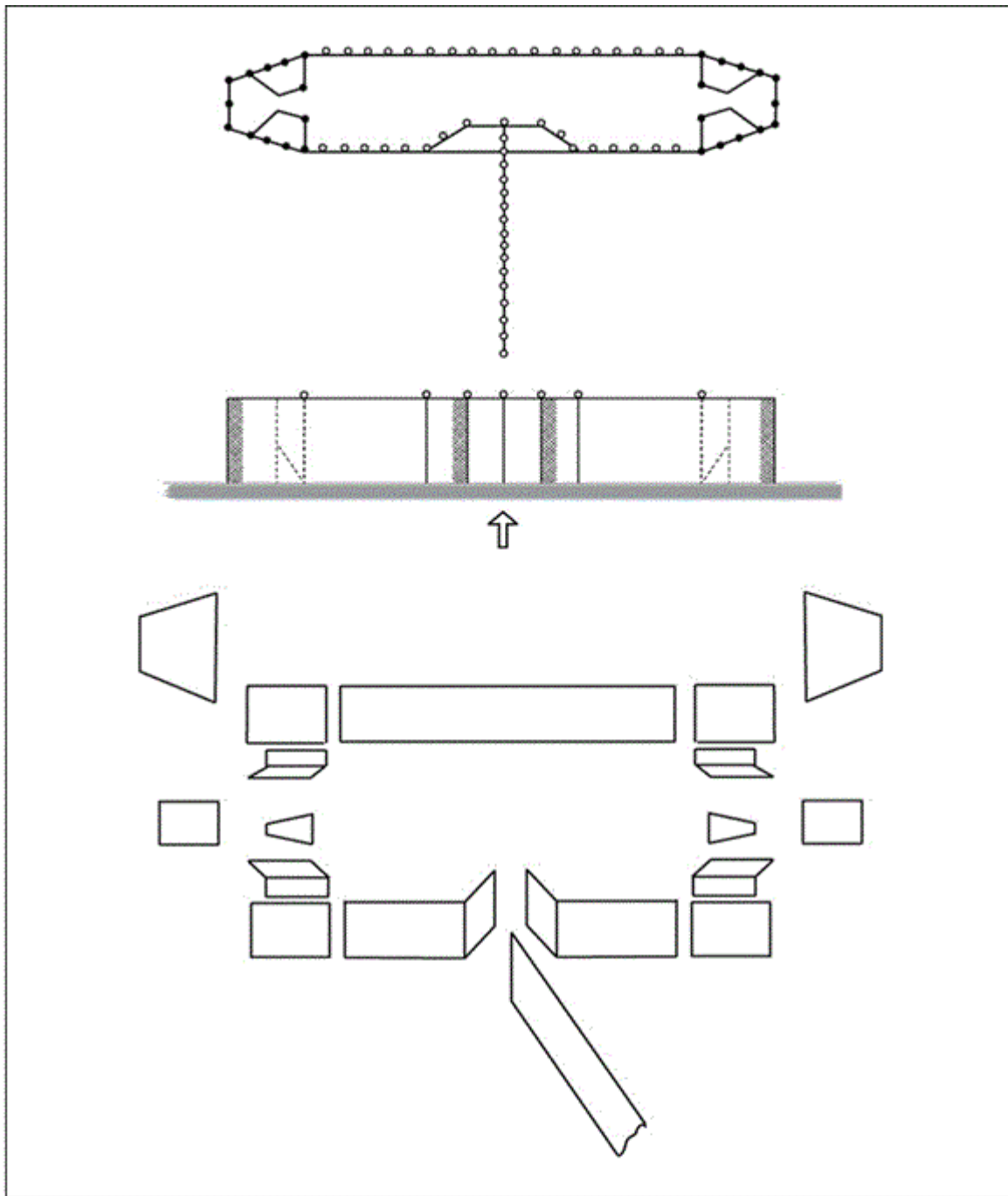
[부도 나-1]

건망 어구 겨냥도 및 조업모식도



[부도 나-2]

건망 표준어구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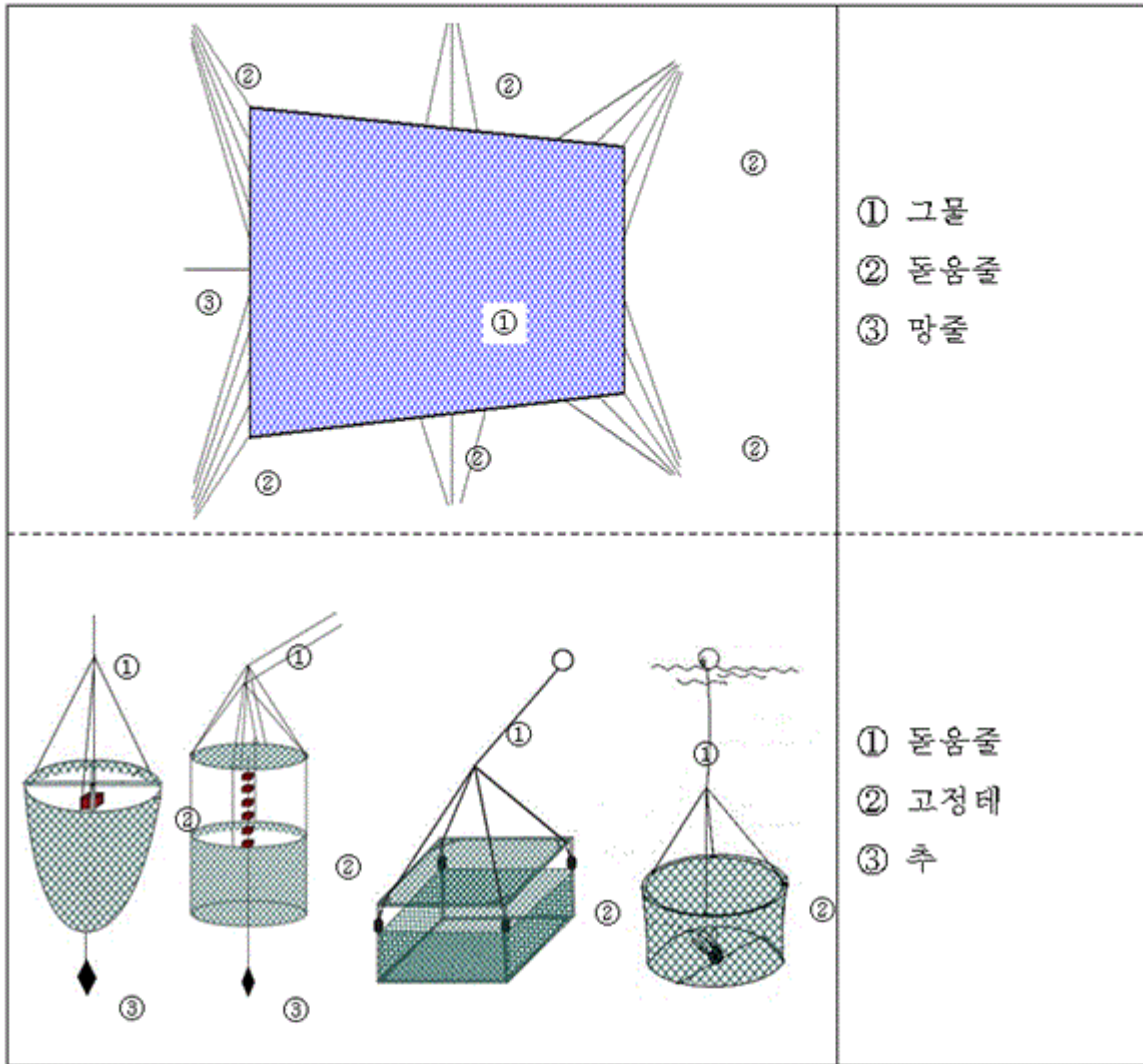


다. 들망어업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그물에 테가 없는 사각형 모양 등의 그물과 돌움줄로 구성되거나 그물의 위 언저리에 테가 있는 형태와 돌움줄로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다-1 및 부도 다-2와 같다.
-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에 적합한 어구를 허가된 구획 안에서 본선이나 본선 및 부속선[어업용 부유(浮遊)구조물을 포함한다]이 물속에 미리 수평으로 부설하여 수산동물이 어구 위에 오면 사람이나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어구를 들어 올려 수산동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다-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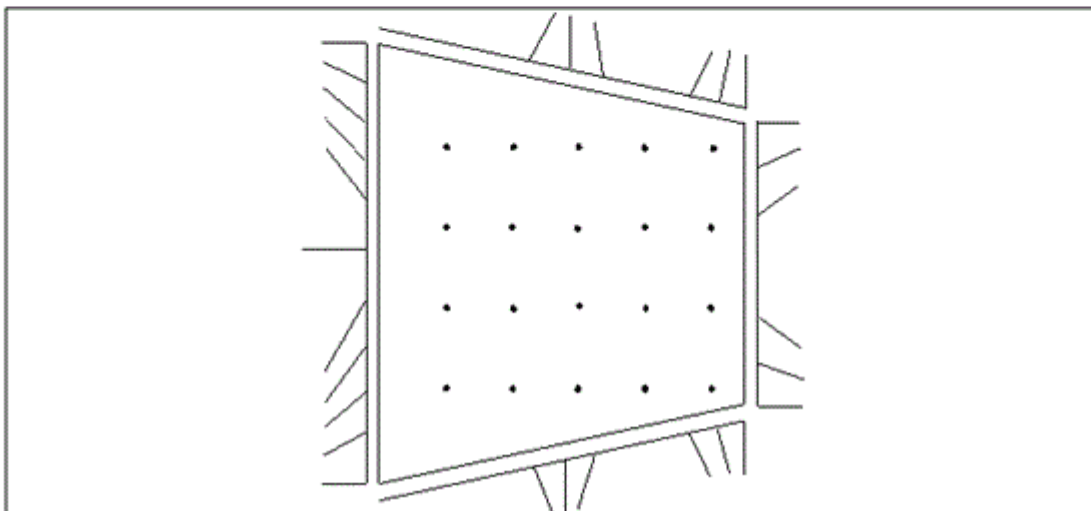
[부도 다-1]

들망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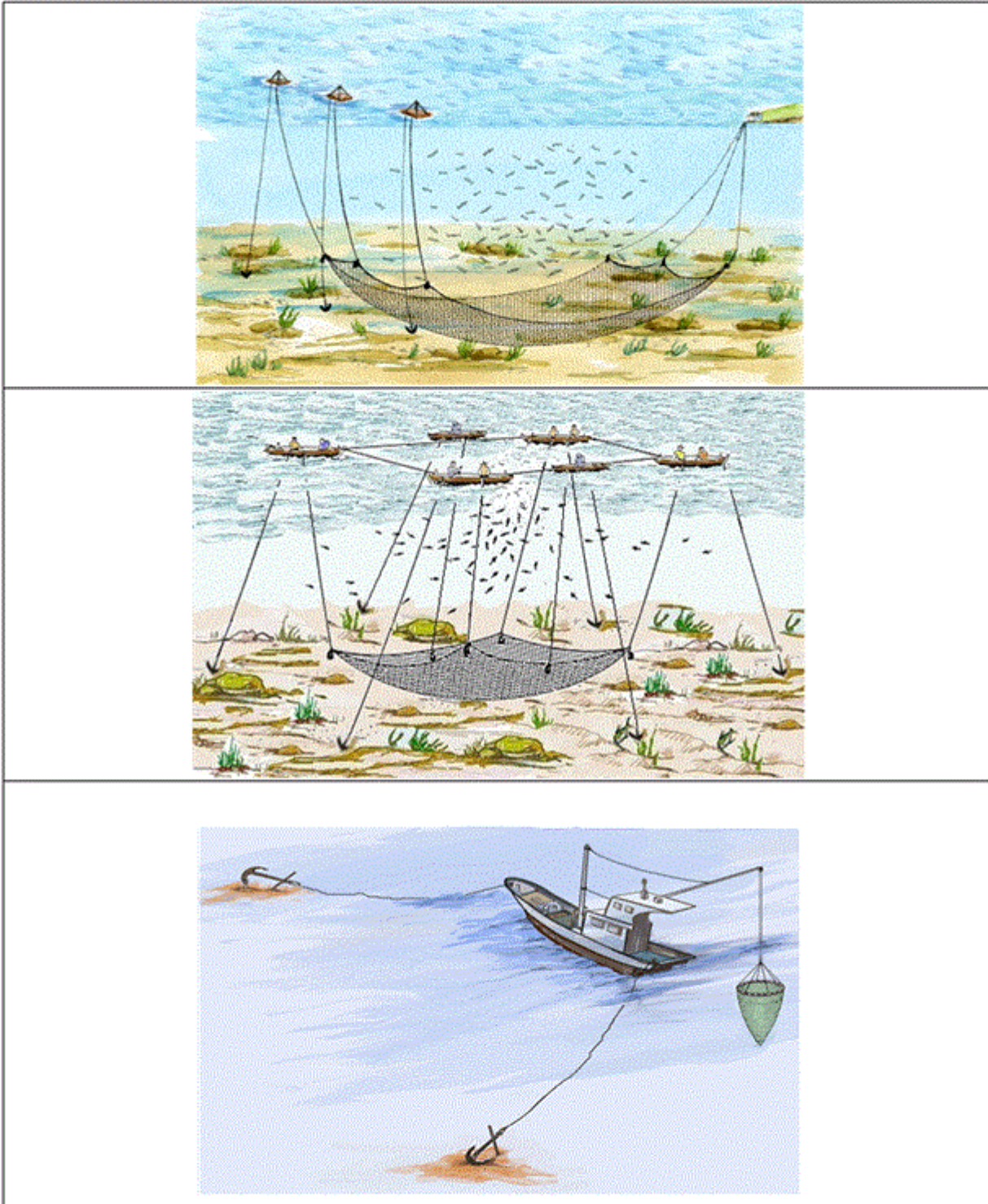
[부도 다-2]

들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다-3]

들망 조업모식도



라. 선인망어업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라-1 및 부도 라-2와 같다.
-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허가된 구역 안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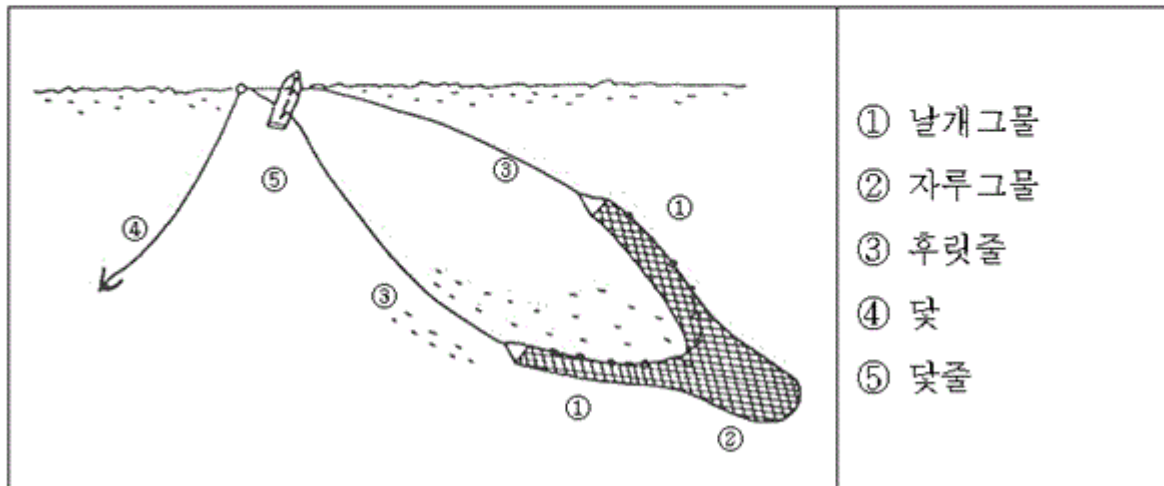
가도록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라-1과 같다.

가) 한쪽 날개그물, 자루그물, 다른 쪽 날개그물 순서로 투망한다.

나) 끌줄 길이만큼 떨어진 곳에 닻을 투하하여 어선을 고정시킨 후 날개그물의 양 끝에 달린 끌줄을 어선에서 양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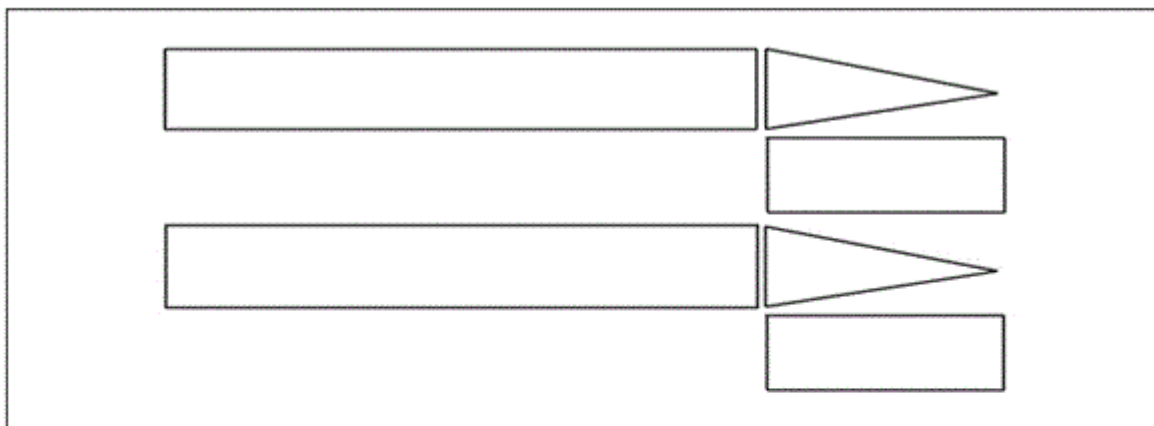
[부도 라-1]

선인망 어구 겨냥도 및 조업모식도



[부도 라-2]

선인망 표준어구 구성도



마. 승망류어업(호망·승망·각망)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마-1 및 부도 마-2와 같다.

가) 길그물과 통그물로 구성된 어구

나) 통그물은 헛통과 고리테그물[자루그물의 중간부분에 성형된 테(고리)를 부착한 나팔 모양의 그물을 말하며, 고리테그물의 개수에 따라 2각망, 3

각망 등으로 구분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된 어구

다) 통그물에 고리태그물을 부착한 어구. 다만, 고리태그물 속에 깔때기(자루그물 속에 부착되는 원추대 모양의 그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착할 수 있다.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에 적합한 어구 1통을 허가된 구획안에 부설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은 부도 마-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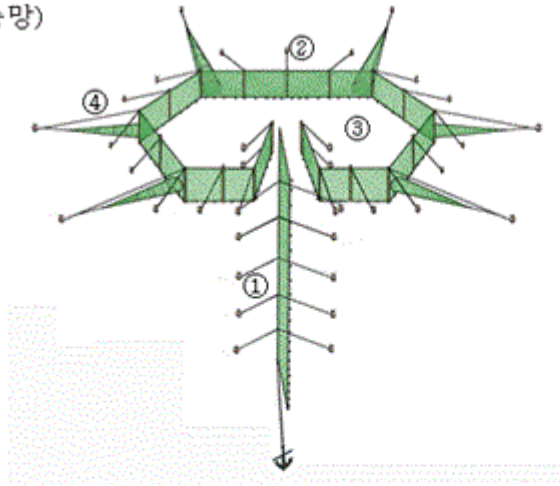
가)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띠 모양의 길그물을 설치하고, 길그물의 한쪽 끝에 삼각형 또는 사각형 모양의 통그물을 설치한다.

나) 통그물에 달린 고리태그물을 양망하여 어획물을 처리한 후 다시 투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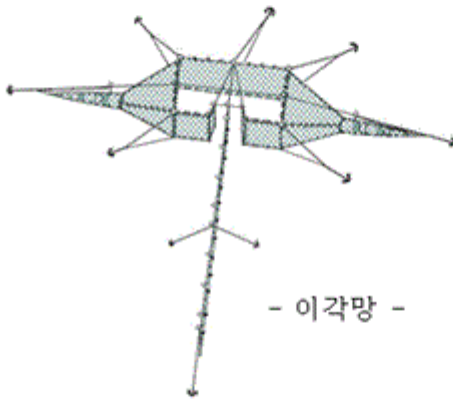
[부도 마-1]

승망류 어구 겨냥도 및 조업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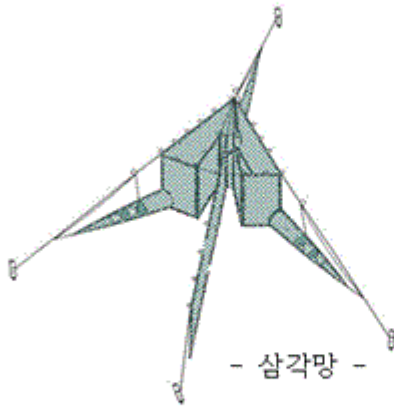
(호망·승망)



(각망)



- 이각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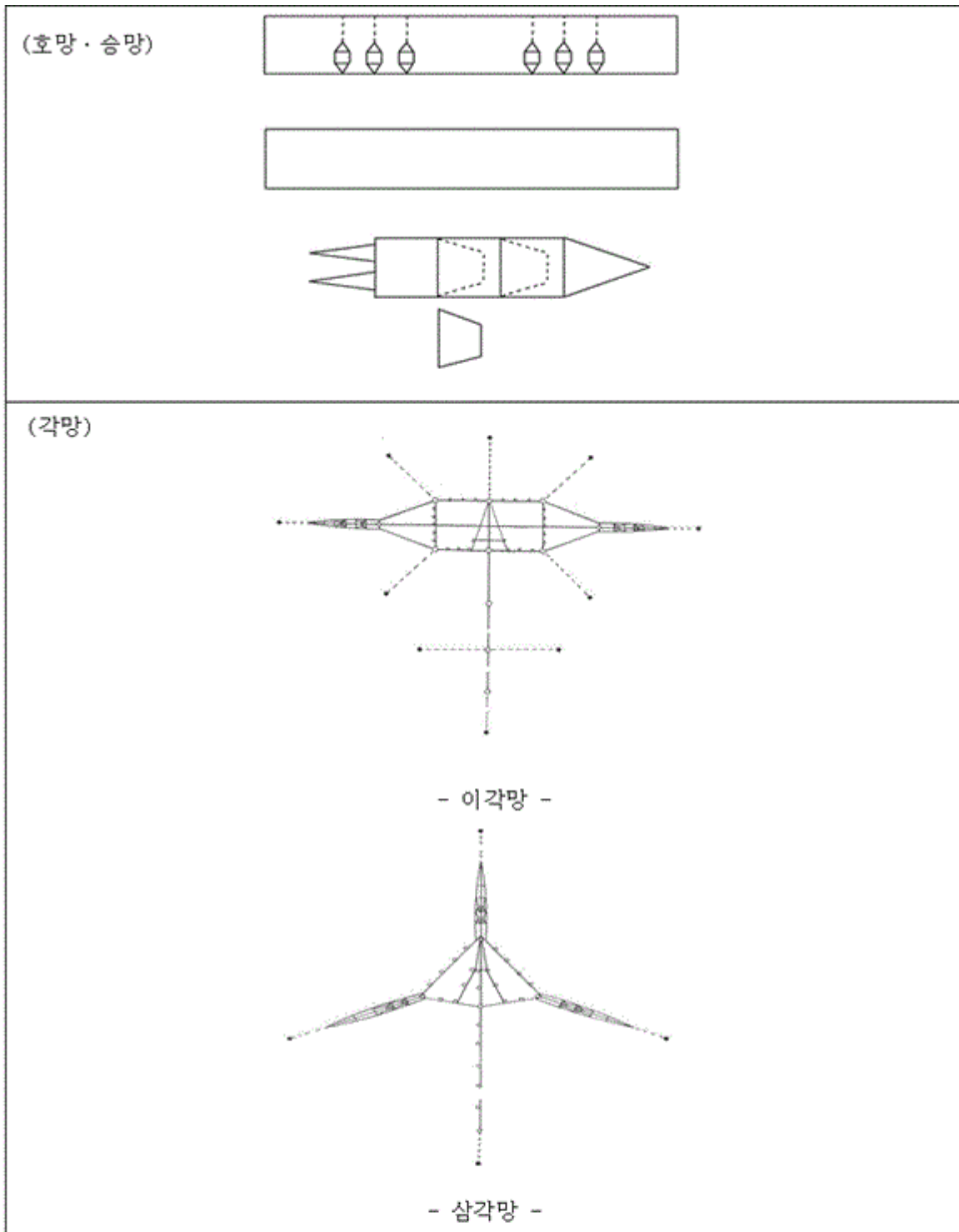


- 삼각망 -

- ① 길그물
- ② 통그물
- ③ 헛통
- ④ 고리테그물

[부도 마-2]

승망류 표준어구 구성도



바. 안강망어업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바-1 및 부도 바-2와 같다.

가)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나) 자루그물 입구 상부에는 뜰과 같은 부력재를 달고, 하부에는 발돌과 같은 침강재를 달며, 양쪽 측면에는 범포를 달아 그물이 수직과 좌우로 전개되도록 구성된 어구 또는 자루그물 상부와 하부가 수해(자루그물 입구 상부에 부착하는 부력이 있는 긴 나무 또는 쇠파이프를 말한다. 이하 같

다)와 압해(자루그물 입구 하부에 부착하는 침강력이 있는 긴 나무 또는 철봉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된 어구

다) 자루그물 내부에 어류를 분류하는 그물을 여러 개 부착할 경우 부착한 어류 분류망에는 어류 탈출구를 설치해야 하며, 그물코의 크기는 별표 8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에 적합한 어구를 이용하여 허가된 구역 안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간 수산동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바-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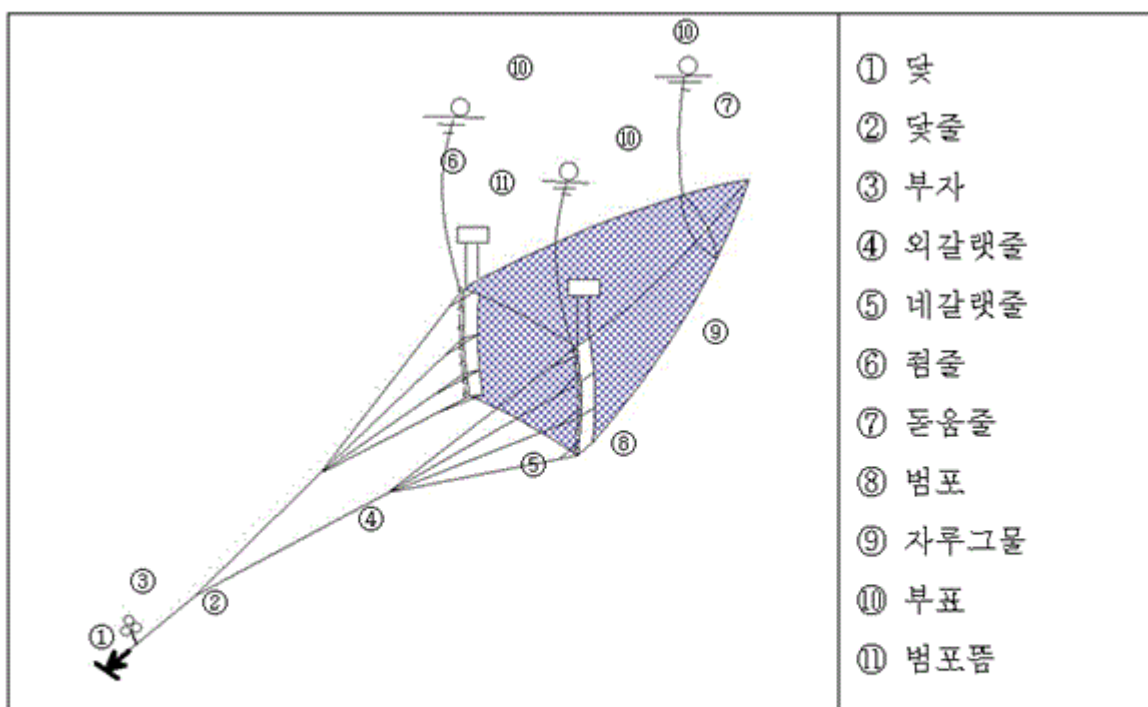
가) 자루그물을 해저에 닻으로 고정 부설하여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간 수산동물을 포획한다.

나) 어구 고정용 닻, 자루그물, 범포를 투하한 뒤 조임줄, 부표 순서로 투망한다.

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투망의 역순으로 양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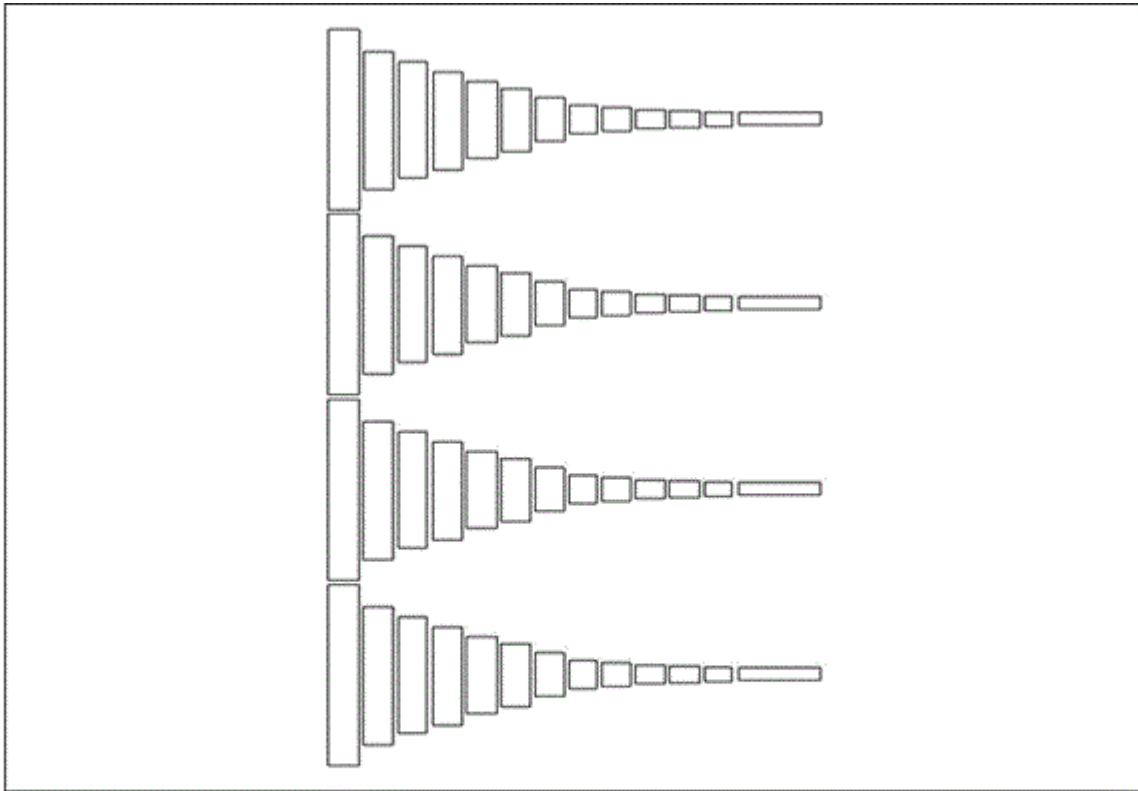
[부도 바-1]

안강망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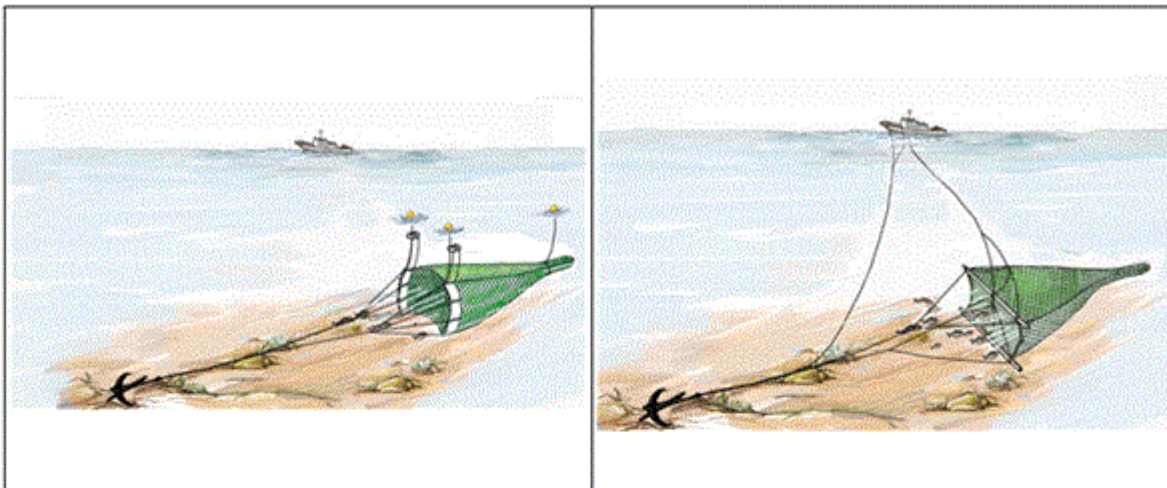
[부도 바-2]

안강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바-3]

안강망 조업모식도



사. 장망류어업(주목망 · 장망 · 낭장망)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사-1 및 부도 사-2와 같다.

가) 자루그물과 날개그물로 구성된 어구로서 자루그물 속에 선택적으로 깔때기 부착이 가능하다. 다만, 주목망어업은 날개그물을 부착할 수 없다.

나) 자루그물 입구의 크기가 좌우 양쪽에 부착되는 말뚝 또는 뿔침대에 의해 결정되는 어구(주목망)

다) 날개그물 앞쪽과 자루그물 끝부분을 닻(명, 말뚝)으로 고정한 어구로서
자루그물 속에 고리테를 선택적으로 부착한 어구(장망)

라) 날개그물 앞쪽과 자루그물 끝부분을 닻(명, 말뚝)으로 고정한 어구(낭장망)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에 적합한 어구 1통을 허가된 구역
안에 부설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간 수산동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사-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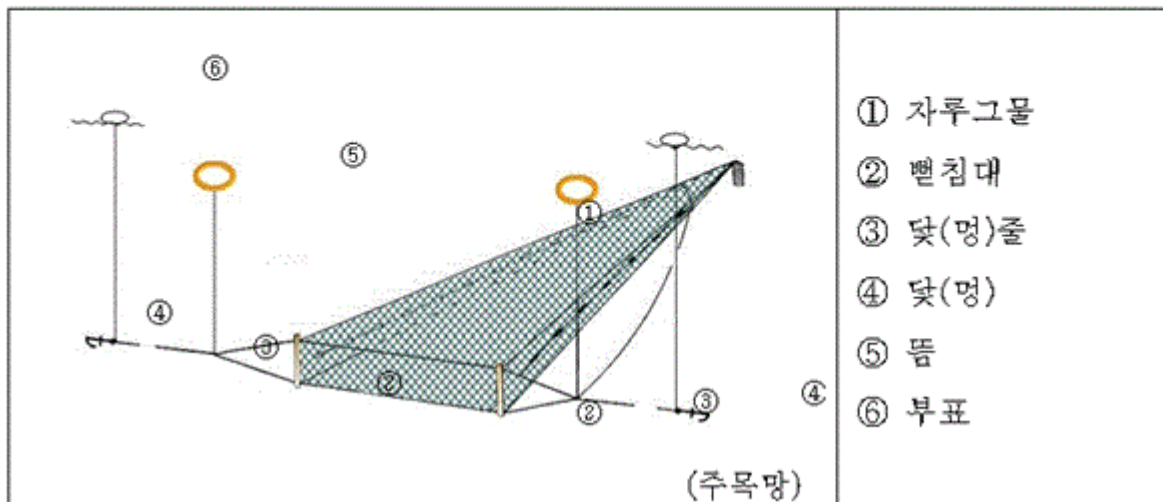
가) 2개의 말뚝을 해저에 박고 거기에 그물 입구를 벌려서 고정시켜 부설
하거나 그물 입구 양쪽에 뺨침대를 대고 닻(명)줄을 좌우 방향으로 내어
그물 입구가 벌어지게 부설(주목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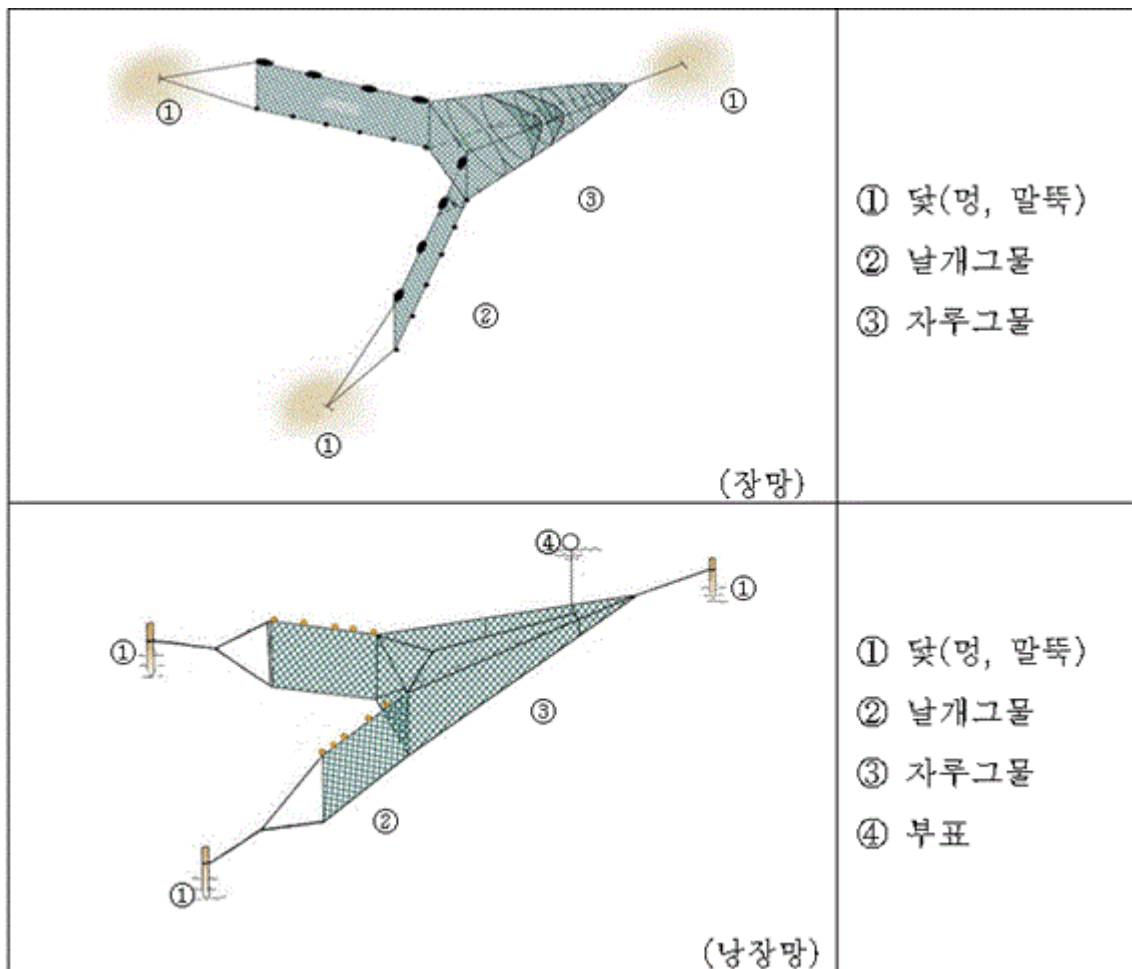
나) 날개그물 양쪽 앞쪽과 자루그물 끝을 닻(명, 말뚝)으로 벌려서 고정하
여 부설(장망, 낭장망)한다.

다) 수산동물이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면 자루그물을 양망한다.

[부도 사-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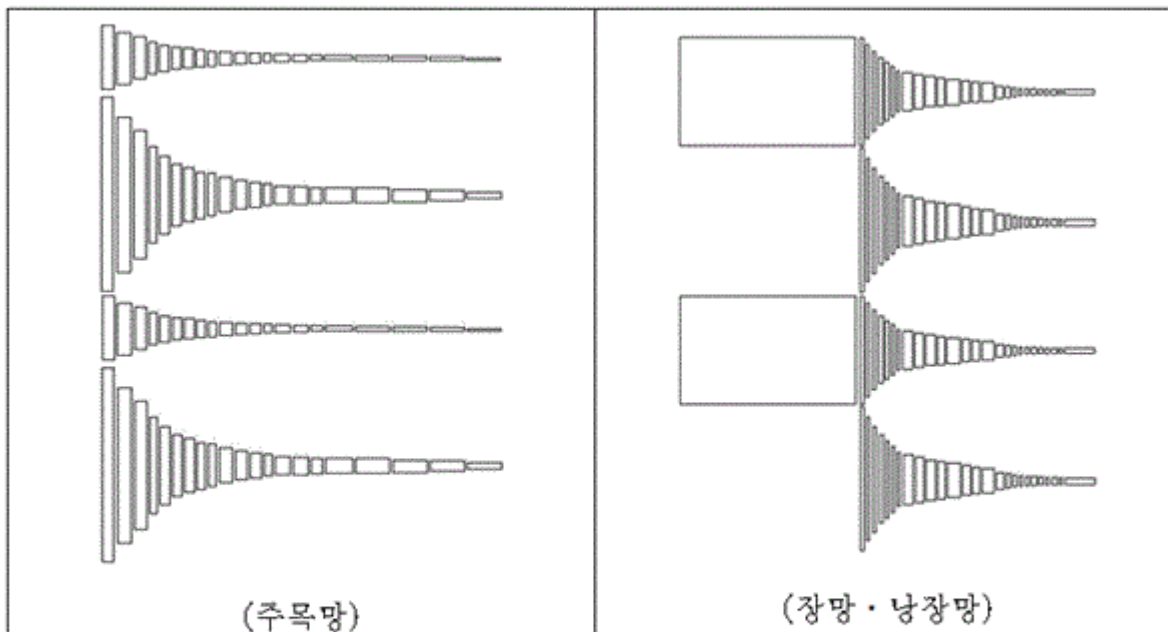
장망류 어구 겨냥도 및 조업모식도





[부도 사-2]

장망류 표준어구 구성도



아. 지인망어업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아-1 및 부도 아-2와 같다.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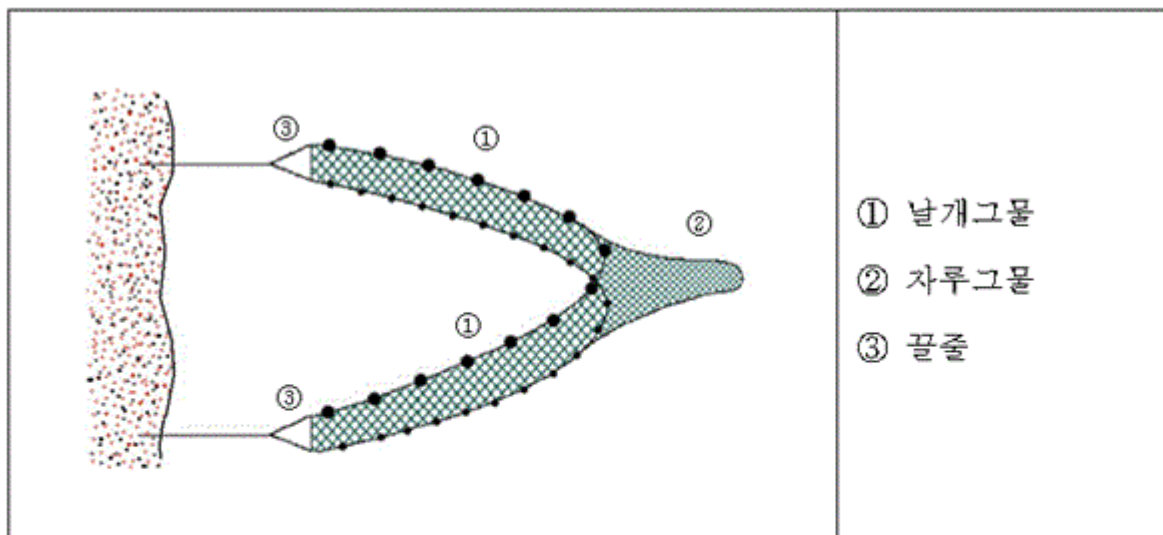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허가된 구획 안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아-1과 같다.

가) 해안에서 끌줄의 한쪽을 육지에 고정시킨 후 어선을 이용하여 그물 입구가 육지 쪽으로 향하도록 한쪽 날개그물, 자루그물, 다른 쪽 날개그물 순서로 투망한 다음 다른 쪽 끌줄을 육지로 넘겨 준다.

나) 날개그물의 양끝에 달린 끌줄을 육지에서 사람이나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끌어당겨 자루그물을 육지로 양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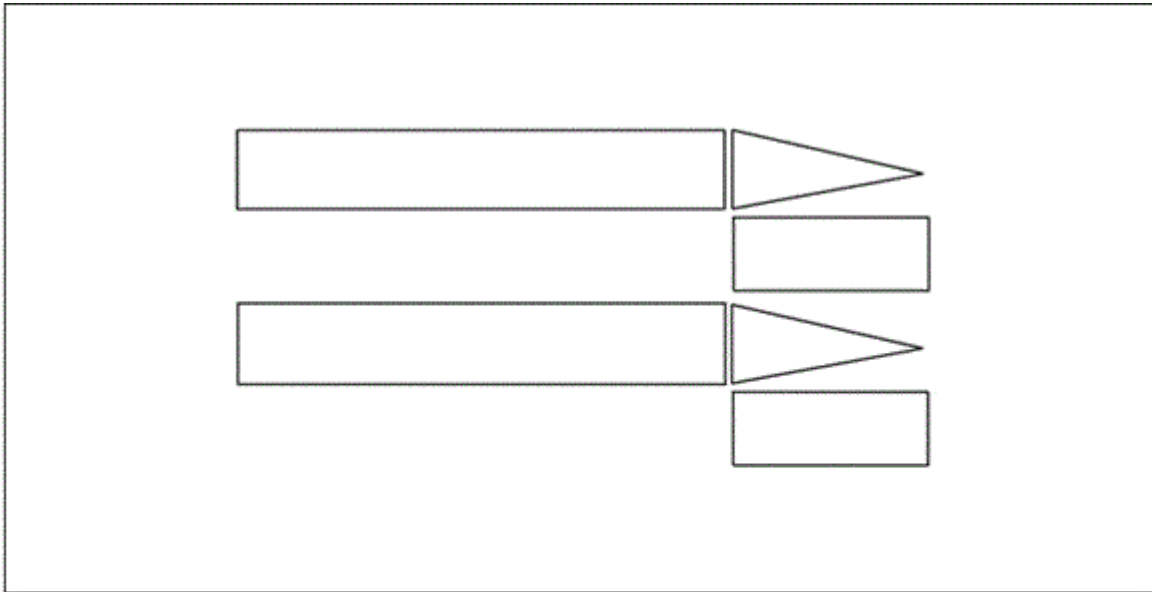
[부도 아-1]

지인망 어구 겨냥도 및 조업모식도



[부도 아-2]

지인망 표준어구 구성도



자. 해선허어업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부도 자-1 및 부도 자-2와 같다.

가)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나) 자루그물 상부와 하부가 수해와 압해로 구성된 어구

다) 자루그물 속에 깔때기를 부착한 어구. 다만 자루그물 속의 깔때기는 선택적으로 부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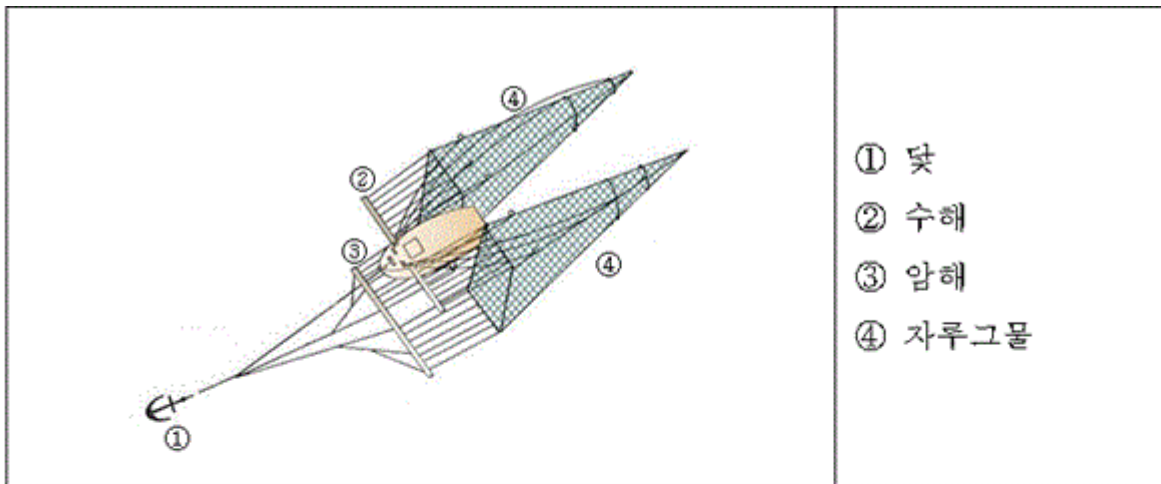
-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에 적합한 어구 1통을 허가된 구획 안에 부설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간 수산동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자-1과 같다.

1) 어선을 닻으로 고정시킨 후에 수해와 압해를 선미부에 매달고 자루그물을 투망한다.

2) 자루그물을 들어 올려 수산동물을 거두어들인 후 다시 투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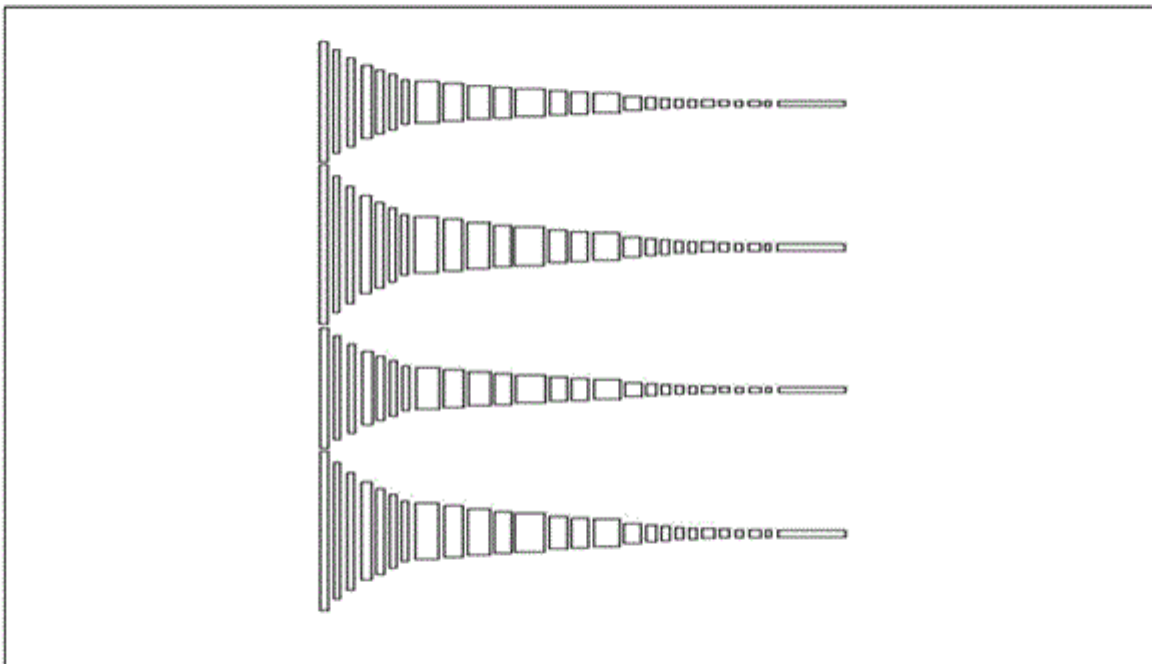
[부도 자-1]

해선허 어구 겨냥도 및 조업모식도



[부도 자-2]

해선망 표준어구 구성도



차. 새우조망어업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차-1 및 부도 차-2와 같다.

가)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나) 날개그물 앞쪽 끝에 갯대를 부착하고 갯대와 갯대 사이에는 대나무나 쇠와이프 등의 막대를 부착하여 어구의 입구가 좌우로 벌어지게 구성된 어구

다) 그물코의 규격은 15밀리미터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하며, 자루그물에 허그물(누두망)을 부착하지 않은 어구

라) 망구에 설치한 막대의 길이가 8미터 이하인 어구

마) 날개그물의 길이가 7미터 이하인 어구

바) 막대와 자루그물 입구의 사이에 체인을 설치하지 않은 어구

사) 막대의 좌우 갯대에 썰매판을 부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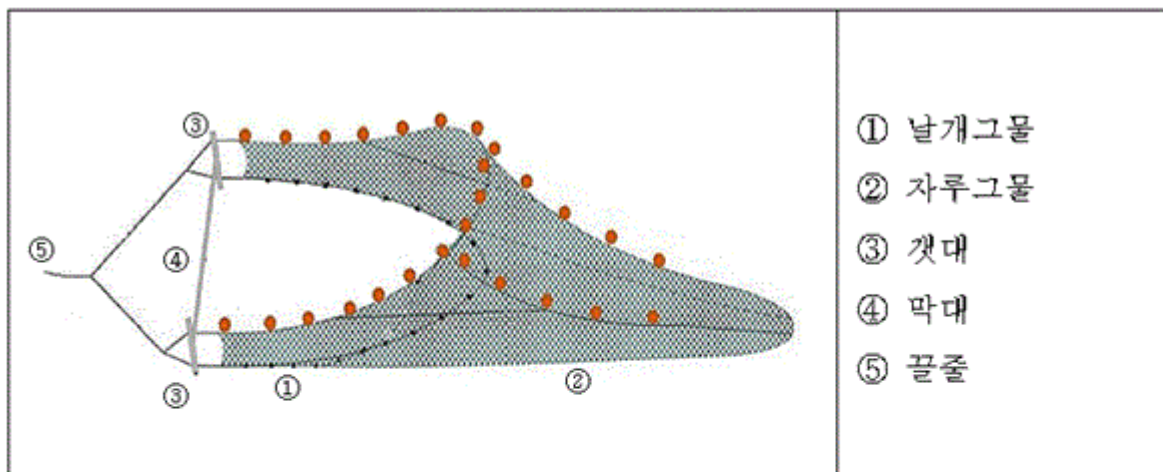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1척으로 1)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허가된 구획 안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새우류를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차-3과 같다.

가) 현측 또는 선미에서 자루그물부터 투망하고, 1가닥의 끌줄을 내어 준 후 저층을 끌면서 새우류를 포획한다.

나) 예망이 완료되면 끌줄을 감아 들여 막대를 선체에 고정시킨 후 자루그물을 양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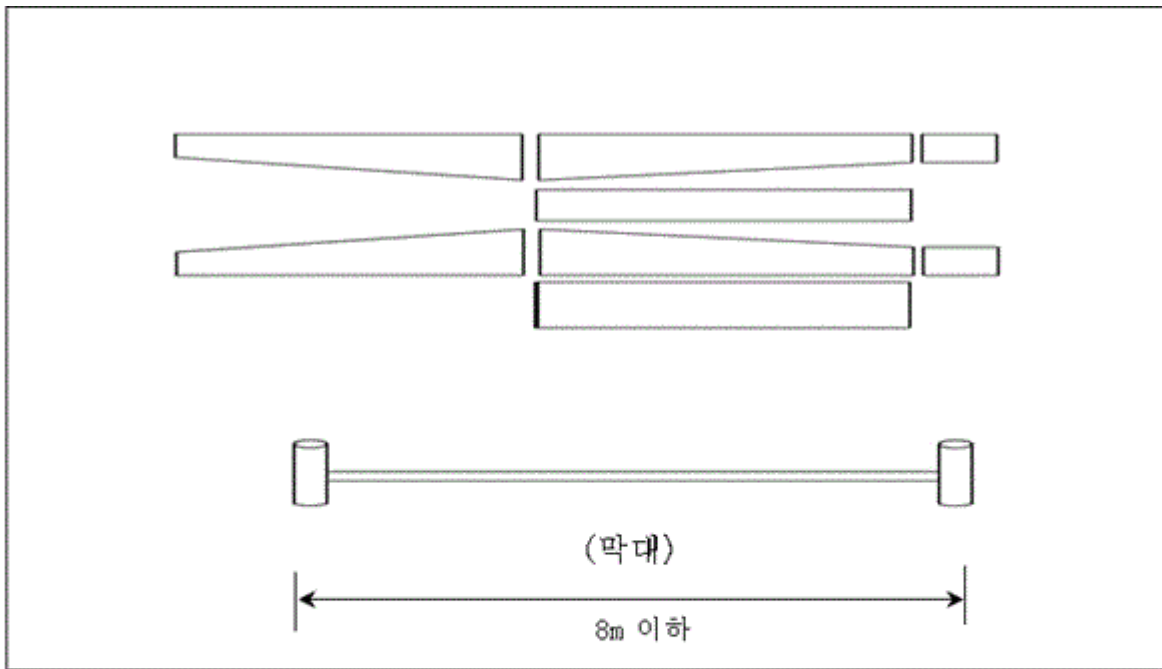
[부도 차-1]

새우조망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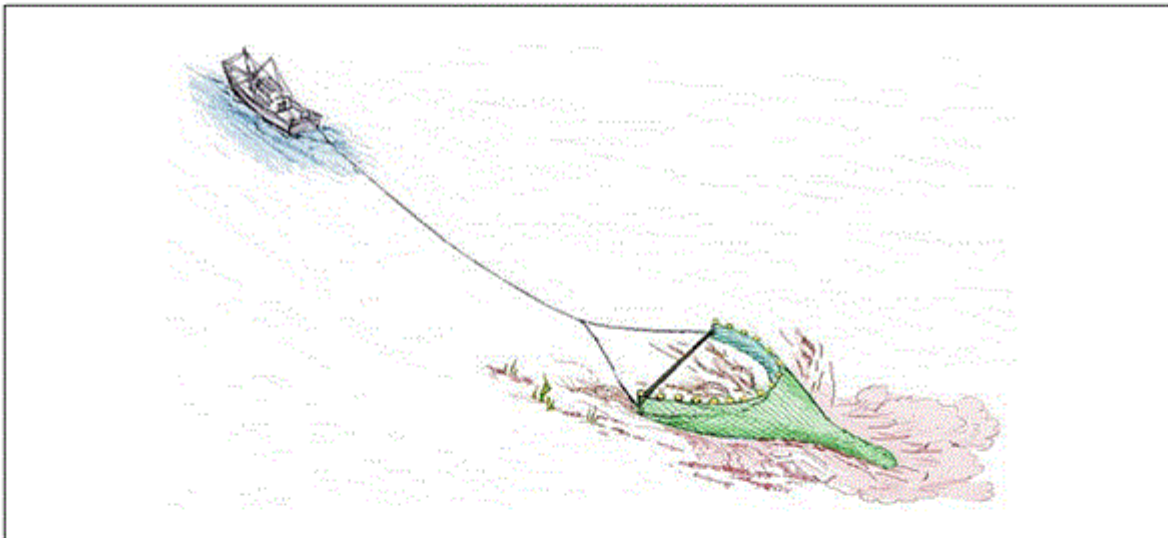
[부도 차-2]

새우조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차-3]

새우조망 조업모식도



카. 실뱀장어안강망어업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카-1 및 부도 카-2와 같다.
 - 가)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또는 자루그물과 바지(barge)로 구성된 어구.
이 경우 바지는 총 길이 16미터 이하의 추진축 및 추진동력 장치가 없는 배 모양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
 - 나) 자루그물 상부와 하부가 수해와 암해로 구성된 어구(수해·암해의 길이는 각각 10미터 이하. 다만, 1통의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 수해·암해의 길이는 각각 20미터 이하)

다) 자루그물 속에 깔때기를 부착한 어구. 다만, 자루그물 속의 깔때기는 선택적으로 부착할 수 있다.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1척으로 1)에 적합한 1통 또는 2통의 어구를 허가된 구획 안에 부설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어구 속으로 들어간 실뱀장어를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카-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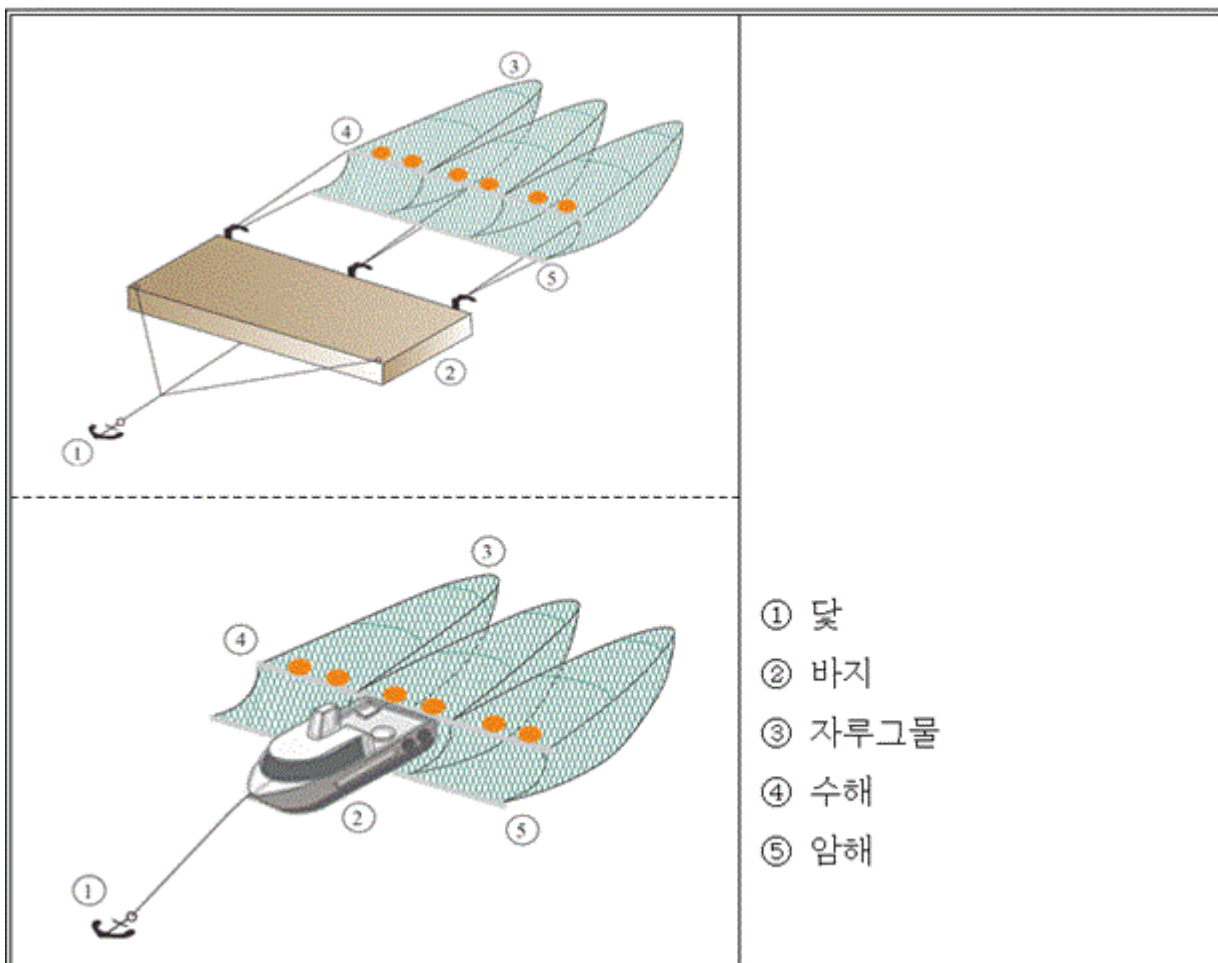
가) 닻으로 고정시킨 바지에 어구를 연결하여 조업하거나 허가받은 어선의 선미에 직접 부착하여 조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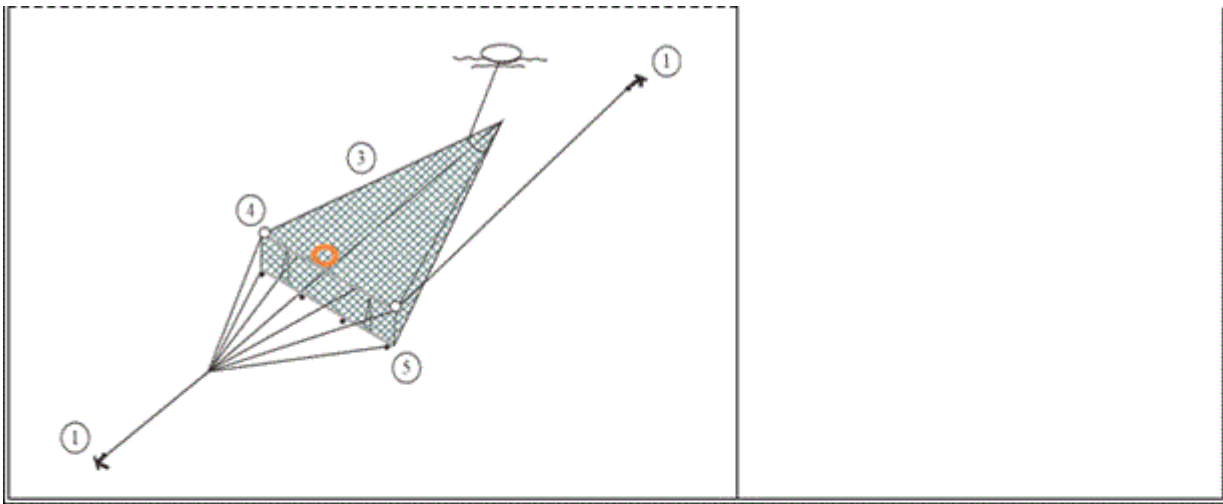
나) 자루그물을 들어 올려 실뱀장어를 거두어들인 후 다시 투망한다.

다) 1)에 따른 수해·암해의 길이를 각각 20미터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 1통의 어구를 사용해야 한다.

[부도 카-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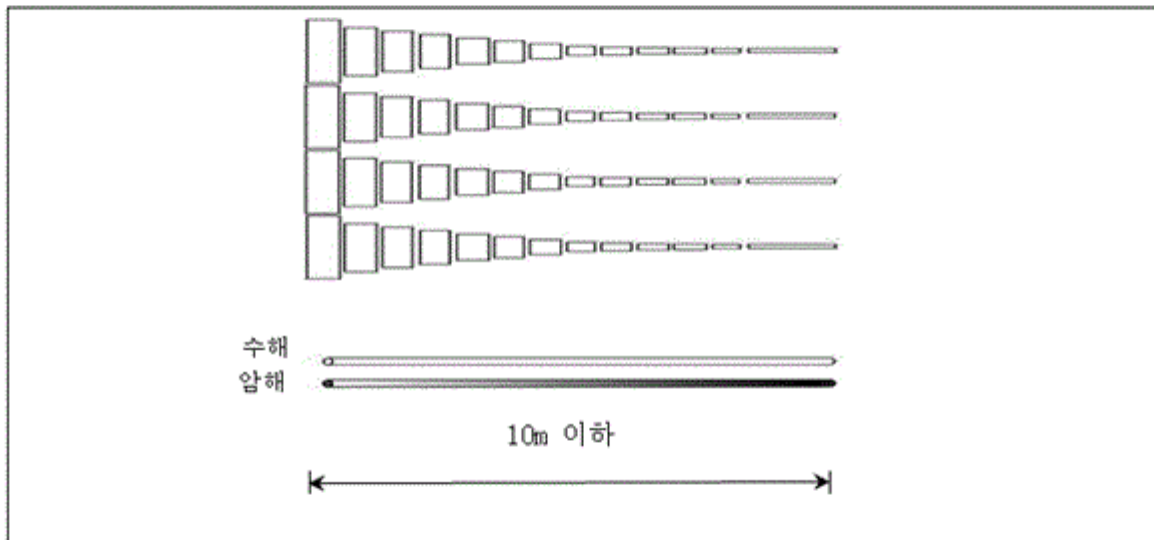
실뱀장어안강망 어구 겨냥도 및 조업모식도





[부도 카-2]

실뱀장어안강망 표준어구 구성도



타. 패류형망어업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타-1 및 부도 타-2와 같다.

가) 일정한 모양의 고정틀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나) 고정틀에 자루그물이 직접 부착되어 있고, 고정틀 밑면에는 일정 간격의 갈퀴가 부착되어 있는 어구. 다만, 키조개, 고둥류를 포획하려는 경우에는 갈퀴를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다) 갈퀴의 간격이 3.5센티미터 이상이고, 그물코의 안쪽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인 어구. 다만, 시·도지사가 해역별·지역별 패류의 종류별 특성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고시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어구에 흡입펌프 또는 분사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어구

마) 고정틀의 크기를 가로 5미터, 세로 1미터 이하로 제작한 어구

바) 고정틀 좌우에 썰매판을 부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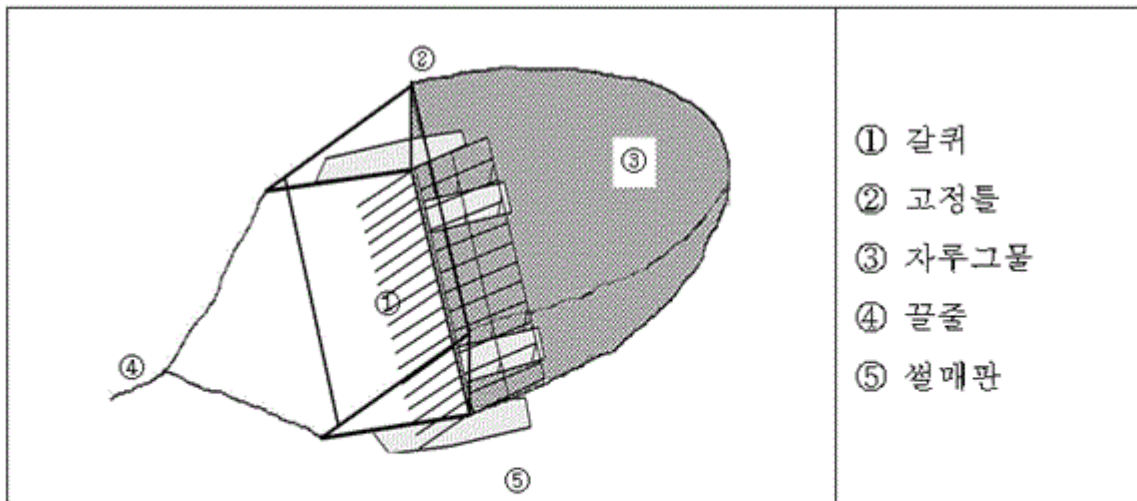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1)에 적합한 어구를 허가된 구획 안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패류를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타-3과 같다.

가) 2통 이하의 어구를 투하하고, 끌줄을 선체에 고정시킨 후 저층을 끌면서 예망한다.

나) 예망이 완료되면 끌줄을 감아 들어 자루그물을 양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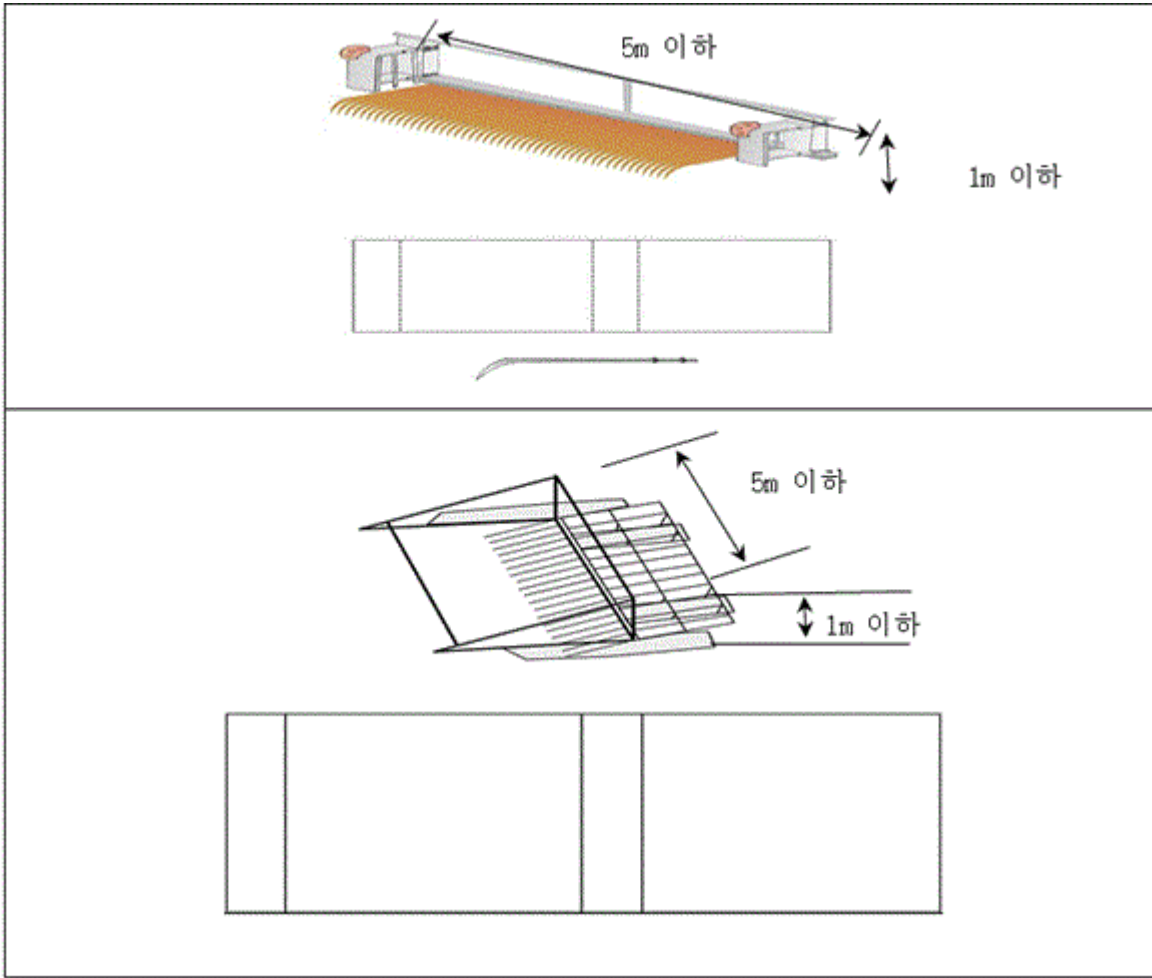
[부도 타-1]

패류형망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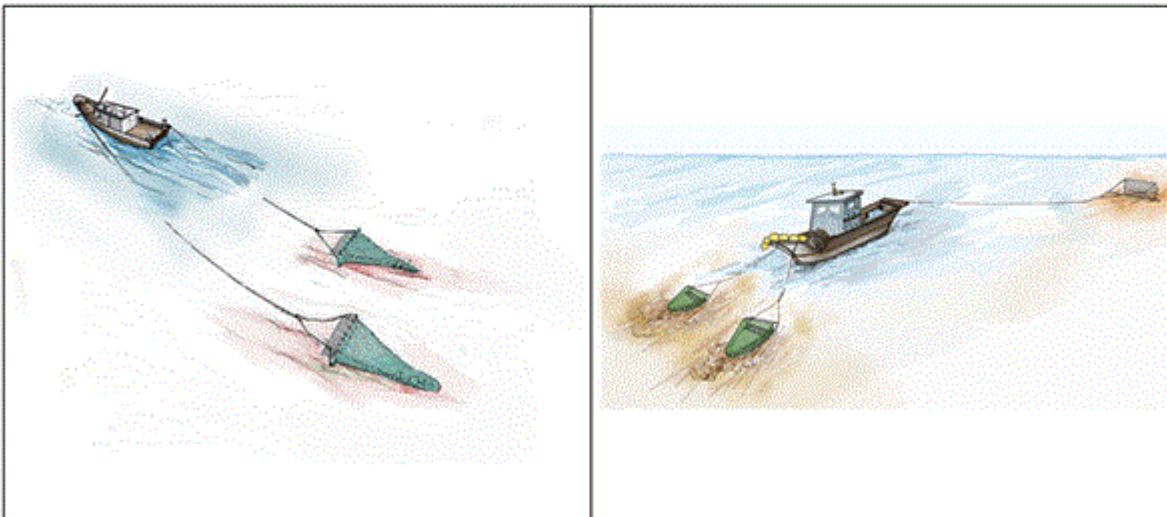
[부도 타-2]

패류형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타-3]

패류형망 조업모식도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와 수산동물 및 혼획의 허용 범위(제24조제1항 관련)

| 어업의 종류 | | 목적
어획물 | 혼획 허용
수산동물 | 혼획의
허용 범위 |
|---------|-----------|-----------------------|---------------|-------------------|
| 1. 근해어업 | 근해형망어업 | 패류 | 그 밖의
수산동물 | 총어획량의
10퍼센트 이내 |
| 2. 연안어업 | 연안조망어업 | 새우류
(젓새우는
제외한다) | 그 밖의
수산동물 | 총어획량의
30퍼센트 이내 |
| 3. 구획어업 | 가. 새우조망어업 | 새우류 | 그 밖의
수산동물 | 총어획량의
30퍼센트 이내 |
| | 나. 패류형망어업 | 패류 | 그 밖의
수산동물 | 총어획량의
10퍼센트 이내 |

비고

1. 총어획량은 어획물의 총중량(킬로그램)을 기준으로 한다.
2. “혼획의 허용 범위”란 어획물의 총중량 중 혼획이 허용되는 수산동물의 총중량 비율을 말한다.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 및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제28조제2항 관련)

|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 |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 |
|--|---|
| 1. 업종별수협 또는 지구별수협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갖출 것
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부속선
나. 기존의 허가받은 어업을 폐업한 어선 |
| 2.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해상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수산물운반선을 갖출 것 |
|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상가공업을 신고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갖출 것
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부속선
나. 기존의 허가받은 어업을 폐업한 어선 |
| 4. 법 제40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한 어업허가를 취소한 후 해당 어선으로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려는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갖출 것
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부속선
나. 기존의 허가받은 어업을 폐업한 어선 |
| 5.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갖출 것
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부속선
나. 기존의 허가받은 어업을 폐업한 어선 |
| 6. 대형선망어업 또는 기선권현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갖출 것
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부속선
나. 기존의 허가받은 어업을 폐업한 어선 |
| 7.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어선의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그 어선을 임차한 자 |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어선을 갖출 것 |
| 8. 어업자로서 해당 어업의 특성상 해양수산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갖출 것
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부속선
나. 기존의 허가받은 어업을 폐업한 어선 |

| | |
|--|-------------------------------------|
| | 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 |
|--|-------------------------------------|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6. 6. 23.>

근해어업의 조업구역 및 허가정수(제31조제1항 본문 관련)

| 어업의 종류 | 허가
정수 | 조업구역 |
|-------------------|----------|--|
| 1. 외끝이대형저인망어업 | 34건 | 경상남도 해안선과 동경 127도 59분 52.21초 선의 교점, 북위 33도 20분 11.80초 동경 127도 59분 52.25초의 교점 및 북위 33도 30분 11.77초 동경 129도 49분 51.68초의 교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이북의 동해를 제외한 서해와 동중국해 |
| 2. 쌍끝이대형저인망어업 | 37건 | 경상남도 해안선과 동경 127도 59분 52.21초 선의 교점, 북위 33도 20분 11.80초 동경 127도 59분 52.25초의 교점 및 북위 33도 30분 11.77초 동경 129도 49분 51.68초의 교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이북의 동해를 제외한 서해와 동중국해 |
| 3. 동해구외끝이중형저인망어업 | 20건 |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북의 해역 |
| 4. 서남해구외끝이중형저인망어업 | 29건 |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남과 이서의 해역 |
| 5. 서남해구쌍끝이중형저인망어업 | 7건 |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남과 이서의 해역 |
| 6. 대형트롤어업 | 34건 | 전국 근해 |
| 7. 동해구중형트롤어업 | 23건 |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북의 해역 |
| 8. 대형선망어업 | 25건 | 전국 근해 |
| 9. 소형선망어업 | 35건 | 전국 근해 |
| 10. 근해채낚기어업 | 588건 | 전국 근해 |
| 11. 근해자망어업 | 569건 | 전국 근해 |
| 12. 근해안강망어업 | 199건 | 전국 근해 |
| 13. 근해봉수망어업 | 38건 | 전국 근해 |

| | | |
|---------------|------|---|
| 14. 근해자리돔들망어업 | 3건 | 제주특별자치도 연해 |
| 15. 근해장어통발어업 | 36건 | 전국 근해 |
| 16. 근해문어단지어업 | 32건 | 전국 근해 |
| 17. 근해통발어업 | 159건 | 전국 근해 |
| 18. 근해연승어업 | 456건 | 전국 근해 |
| 19. 근해형망어업 | 55건 | 인천광역시·경기도 및 충청남도 연해 |
| | 17건 | 전북특별자치도 연해 |
| 20. 기선권현망어업 | 54건 |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남에서 경상남도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도 경계선 사이의 해역 |
| | 14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해역 |
| 21. 잠수기어업 | 6건 | 강원특별자치도 연해 |
| | 9건 | 경상북도 연해 |
| | 93건 |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연해 |
| | 39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연해 |
| | 28건 | 인천광역시·경기도·충청남도 및 전북특별자치도 연해 |

비고

1.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과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의 허가어선 중 1척이 침몰된 경우에는 어선을 복구하거나 건조할 때까지 외끌이로 조업할 수 있다.
2.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연해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연해에서 조업하는 잠수기어업의 공동조업구역 지정과 공동조업구역별 조업척수의 범위는 북위 34도 56분 50.30초 동경 127도 50분 47.92초부터 북위 34도 56분 22.96초 동경 127도 49분 52.37초를 거쳐 북위 34도 55분 06.20초 동경 127도 49분 16.22초와 북위 34도 55분 26.73초 동경 127도 50분 24.97초 및 북위 34도 56분 24.96초 동경 127도 51분 25.40초를 거쳐 북위 34도 56분 28.67초 동경 127도 52분 17.95초에 이르는 선과 북위 34도 43분 18.27초 동경 127도 53분 27.44초부터 북위 34도 43분 00.87초 동경 127도 47분 09.46초와 북위 34도 44분 39.52초 동경 127도 46분 04.03초를 직선으로 연결한 선과 북위 34도 44분 39.52초 동경 127도 46분 04.03초부터 북위 34도 51분 22.90초 동경 127도 46분 33.50초에 이르는 해안선을 거쳐 북위 34도 51분 24.75초 동경 127도 47분 30.09초를 거쳐

섬진강 하구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경상남도의 도 경계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경상남도과 부산광역시에서 허가받은 잠수기어선의 공동조업구역(부도와 같다)으로 하되, 구역별 조업척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하는 30척 범위와 경상남도지사가 부산광역시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30척 범위에서 조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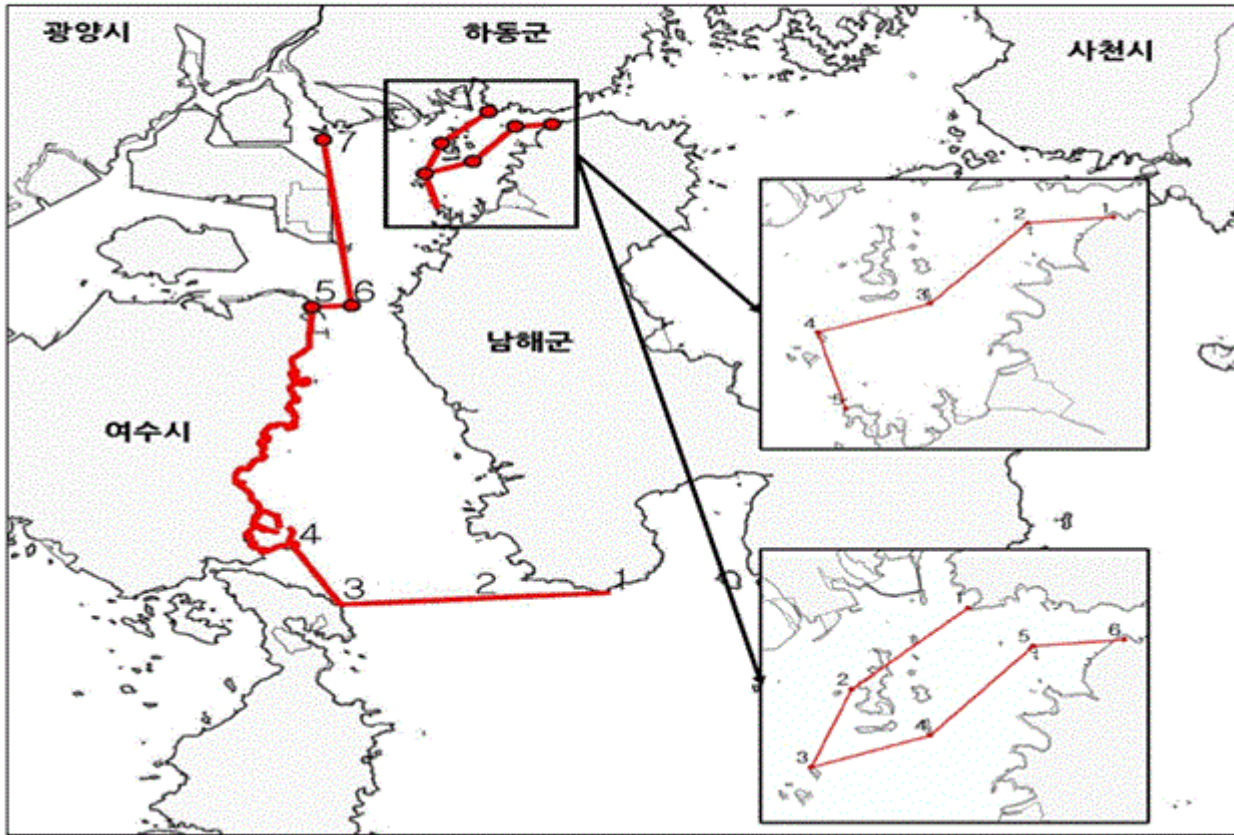
- 1) 북위 34도 56분 28.67초 동경 127도 52분 17.95초
- 2) 북위 34도 56분 24.96초 동경 127도 51분 25.40초
- 3) 북위 34도 55분 26.73초 동경 127도 50분 24.97초
- 4) 북위 34도 55분 06.20초 동경 127도 49분 16.22초
- 5) 북위 34도 54분 10.69초 동경 127도 49분 32.66초

나. 북위 34도 43분 09.61초 동경 127도 50분 18.44초부터 북위 34도 43분 00.87초 동경 127도 47분 09.46초와 북위 34도 44분 39.52초 동경 127도 46분 04.03초를 직선으로 연결한 선과 북위 34도 44분 39.52초 동경 127도 46분 04.03초로부터 북위 34도 51분 22.90초 동경 127도 46분 33.50초에 이르는 해안선을 거쳐 북위 34도 51분 24.75초 동경 127도 47분 30.09초에 이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역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하는 52척과 경상남도지사가 부산광역시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17척까지만 조업할 수 있다.

다. 가목과 나목의 조업구역을 제외한 공동조업구역선 안의 해역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하는 30척과 경상남도지사가 부산광역시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17척까지만 조업할 수 있다.

[부도]

잠수기어선의 공동조업구역도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5. 12. 16.>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한 선복량의 한계(제37조제1항 관련)

1. 근해어업

| 어업의 종류 | 선복량의 한계(총톤수) |
|-------------------|----------------|
| 가.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 60톤 이상 140톤 미만 |
| 나.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 60톤 이상 140톤 미만 |
| 다.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 20톤 이상 60톤 미만 |
| 라.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 20톤 이상 60톤 미만 |
| 마.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 20톤 이상 60톤 미만 |
| 바. 대형트롤어업 | 60톤 이상 140톤 미만 |
| 사. 동해구중형트롤어업 | 20톤 이상 60톤 미만 |
| 아. 대형선망어업 | 50톤 이상 |
| 자. 소형선망어업 | 10톤 이상 30톤 미만 |
| 차. 근해채낚기어업 | 10톤 이상 |
| 카. 근해자망어업 | 10톤 이상 90톤 미만 |
| 타. 근해안강망어업 | 10톤 이상 90톤 미만 |
| 파. 근해붕수망어업 | 10톤 이상 90톤 미만 |
| 하. 근해자리돔틀망어업 | 10톤 이상 90톤 미만 |
| 거. 근해장어통발어업 | 10톤 이상 90톤 미만 |
| 너. 근해문어단지어업 | 10톤 이상 90톤 미만 |
| 더. 근해통발어업 | 10톤 이상 90톤 미만 |
| 러. 근해연승어업 | 10톤 이상 |
| 머. 근해형망어업 | 20톤 미만 |
| 버. 기선권현망어업 | 40톤 미만 |
| 서. 잠수기어업 | 10톤 미만 |

2. 연안어업

| 어업의 종류 | 선복량의 한계(총톤수) |
|--------|--------------|
|--------|--------------|

| | |
|--------------|--------|
| 가. 연안개량안강망어업 | 10톤 미만 |
| 나. 연안선망어업 | 10톤 미만 |
| 다. 연안통발어업 | 10톤 미만 |
| 라. 연안조망어업 | 10톤 미만 |
| 마. 연안선인망어업 | 10톤 미만 |
| 바. 연안자망어업 | 10톤 미만 |
| 사. 연안틀망어업 | 10톤 미만 |
| 아. 연안복합어업 | 10톤 미만 |

3. 구획어업

| 어업의 종류 | 선복량의 한계(총톤수) |
|--------------|---|
| 가. 새우조망어업 | 5톤 미만 |
| 나. 실뱀장어안강망어업 | 5톤 미만 |
| 다. 패류형망어업 | 5톤(시·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을 설정·관리하는 경우에는 8톤) 미만 |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6. 6. 23.>

어업의 종류별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및 금지기간(제38조제2항 관련)

1. 근해어업

| 어업의 종류 | | 금지사항 | 금지기간 | 사용 금지구역 |
|--------|-----------------------|--------|-----------------------------|---|
| 가. | 1) 동해구외끌이중
형저인망어업 | 조업금지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경상
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
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북의 해역 |
| | | | 연중 | 주1)의 해역 |
| | 2) 서남해구외끌이
중형저인망어업 | 조업금지 | 연중 | 주1)의 해역 |
| | 3) 서남해구쌍끌이
중형저인망어업 | 조업금지 | 연중 | 주1)의 해역 |
| 나. | 1) 대형선망어업 | 불빛이용금지 | 연중 | 가) 주2)의 해역
나) 제주특별자치도 추자도와 전
남광주통합특별시 거문도의 주
위 7천4백미터 이내의 해역 |
| | | 삼치포획금지 |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 주3)의 해역 |
| | | 멸치포획금지 | 연중 | 다) 주4)의 해역
라) 주5)의 해역
마) 주6)의 해역 |

법제처

| | | | |
|-----------|--------|-----------------------------|---|
| | | | 빛을 이용하지 않고 고둥어를 포획할 목적으로 조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도 3 참조).
사) 주15)의 해역
아) 주16)의 해역 |
| 2) 소형선망어업 | 불빛이용금지 | 연중 | 가) 주2)의 해역
나) 제주특별자치도 추자도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문도의 주위 7천4백미터 이내의 해역 |
| | 삼치포획금지 |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 주3)의 해역 |
| | 멸치포획금지 | 연중 | 다) 주4)의 해역
라) 주5)의 해역
마) 주6)의 해역 |
| | |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주7)의 해역 |
| | 조업금지 | 연중 | 바) 제주특별자치도 본도 주위 7천4백미터 이내의 해역. 다만, 주15)를 제외한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로부터 2천7백미터 외측 해역에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 | 법제처 | | 242 불빛을 이용하지 않 |

| | | | |
|------------|-------------------------------|--|--|
| | 세 목 망 으 로
된 어 망 사 용
금 지 |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다만, 인천광
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전남광주
통 합 특 별 시
영광군·신안
군은 7월 1일
부터 7월 31
일까지로 한
다. | |
| 다. 근해채낚기어업 | 조업금지 |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울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경
상북도 육지로부터 5천5백미터
이내의 해역 |
| | |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울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경
상북도 육지로부터 2천7백미터
이내의 해역 |
| 라. 근해자망어업 | 멸치포획금지 |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주8)의 해역 |
| | 살오징어포획
금 지 | 연중 | 동해 전 해역과 동경 128도30분
선 기준 동쪽의 남해 해역. 다만,
부산광역시시장·울산광역시시장·경
상북도지사 또는 경상남도지사로
부터 근해자망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44 동해 전 해역과 동경 |

| | | | |
|------------|--|---|--|
| | 세 목 망 으 로
된 어 망 사 용
금 지 |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
지. 다만, 인
천 광 역 시, 경
기 도, 충 청 남
도,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영 광 군 ·
신 안 군 은 7월
1일 부터 7월
31 일 까 지 로
하 고,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해 역 에 서 켜
침 대 를 붙 인
어 구 에 세 목
망 을 사 용 하
는 경 우 에 는
금 지 기 간 을 적
용 하 지 않 는
다. | |
| 마. 근해안강망어업 | 세 목 망 으 로
된 어 망 사 용
금 지

법 제 처 |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다만, 인천광
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 | |

| | | | | |
|------------|---|---|--|--|
| 사. | 1) 근해장어통발어업
2) 근해통발어업 | 게를 포획할 목적으로 통발 사용금지 | 6월 30일까지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10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만, 대게의 경우는 연중으로 한다. | 역
주10)의 해역 |
| | | 대게포획금지, 대게류·붉은대게류 통발 사용금지 | 연중 | 주11)의 해역 |
| | 3) 근해문어단지어업 | 조업금지 | 연중 | 제주특별자치도 본도의 주위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 구역 이내의 해역 |
| 아. 근해형망어업 | 형망 사용금지. 다만, 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거나 승인을 받은 어선에 의해 해당 어장에서 사용되는 형망은 제외한다. | 형망 사용금지. 다만, 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거나 승인을 받은 어선에 의해 해당 어장에서 사용되는 형망은 제외한다. |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 |
| 자. 기선권현망어업 | 별치포획금지
법제처 | 별치포획금지 |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주7)의 해역
248 |

| 어업의 종류 | 금지사항 | 금지기간 | 사용 금지구역 |
|--------------|--|---|--|
| 가. 연안개량안강망어업 | 조업금지 |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다만,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군·신안군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 | |
| 나. 연안선망어업 | 멸치를 포획할 목적의 어망사용금지
(충청남도 연안선망으로 한정한다) | 연중 | 충청남도 태안군 육지로부터 5.5킬로미터 이내의 해역. 다만, 천수만 내측 외의 수역에 대해서는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제외한다. |
| | 불빛이용금지 | 연중 | 1) 주2)의 해역
2) 제주특별자치도 본도 및 추자도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문도의 주위 7천4백미터 이내의 해역 |
| | 새물망으로 어망사용금지 |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 250 |

| | | | |
|------------|---------------------------------------|--|--|
| | 삼치포획금지 |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 주3)의 해역 |
| | 멸치포획금지 | 연중 | 3) 주5)의 해역
4) 주6)의 해역 |
| | |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주7)의 해역 |
| 다. 연안통발어업 | 게를 포획할
목적의 통발
사용금지 |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10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주10)의 해역 |
| | 대게포획금지,
대게류 · 붉은
대게류 통발
사용금지 | 연중 | 주11)의 해역 |
| 라. 연안조망어업 | 조업금지 |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 |
| 마. 연안선인망어업 | 조업금지 |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
| 바. 연안자망어업 | 뽕침대를 붙인
자망 사용금지 | 연중 |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남광주통
합특별시 해역을 제외한 전국해
역 |
| | 세목망으로 된
어망 사용금지
법제처 |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다만, 인천광 | |

| | | | |
|------------|---------------------|---|---|
| | | 침대를 붙인 어구에 세목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 |
| | 멸치포획금지 |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주8)의 해역 |
| 사. 연안들망어업 | 멸치포획금지 | 연중 | 주6)의 해역 |
| | |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주9)의 해역을 제외한 주7)의 해역 |
| 아. 모든 연안어업 | 새우를 포획할 목적의 어망 사용금지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1) 주12)의 해역
2) 주13)의 해역
3) 주14)의 해역 |
| | 멸치를 포획할 목적의 어망사용금지 |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주6)의 해역 |

3. 구획어업

| 어업의 종류 | 금지사항 | 금지기간 | 사용 금지구역 |
|-----------------------------|-----------------|---|---------|
| 가. 장망류어업(장망을 사용하는 어업은 제외한다) | 조업금지

법제처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다만,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 | 254 |

| | | | |
|-----------|----------------------------|---|--|
| | | 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신안군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 | |
| 다. 새우조망어업 | 새우조망으로 새우포획을 허용한 경우 외 사용금지 |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립수산물학원장과 미리 협의를 거쳐 10개월 이내의 조업기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경상남도 통영시·거제시·사천시·남해군 연안해역 |
| | 법제처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립수산물학원장과 미리 협의를 거쳐 10개월 이내의 조업기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장흥군·강진군·고흥군·완도군·진도군·해남군 연안해역 |

| | | | |
|----------|---|---------------------|---|
| | 제3항에 따라
관 리 선 으 로
지정 을 받 거
나 승 인 을 받
은 어 선 에 의
해 해당 어 장
에 서 사 용 되
는 형 망 은 제
외 한다. | | |
| 마. 모든 어업 | 멸치를 포획
할 목적의 어
망사용금지 |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주6)의 해역 |
| | 새우를 포획
할 목적의 어
망사용금지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1) 주12)의 해역
2) 주13)의 해역
3) 주14)의 해역 |

주1)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조업금지구역(별도 참조)

가.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15일까지로 한정한다)

- 1) 북위 40도 27분 16.39초 동경 129도 09분 18.87초
- 2) 북위 39도 48분 58.84초 동경 128도 27분 02.28초
- 3) 북위 39도 21분 52.82초 동경 128도 03분 59.58초
- 4) 북위 39도 17분 42.69초 동경 127도 33분 33.02초

나.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12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 1) 북위 39도 02분 09.47초 동경 128도 06분 47.00초
- 2) 북위 38도 41분 11.90초 동경 128도 25분 21.76초

주2) 북위 38도 00분 09.86초 동경 125도 49분 52.80초, 북위 34도 00분 11.50초 동경 125도 49분 52.90초, 북위 34도 00분 11.54초 동경 127도 59분 52.23초, 북위 34도 30분 11.34초 동경 127도 59분 52.21초, 북위 34도 30분 11.36초 동경 128도 59분 51.90초, 북위 35도 38분 55.10초 동경 129도 34분 20.92초, 북위 36도 04분 39.45초 동경 129도 41분 26.94초, 북위 37도 03분 37.71초 동경 129도 33분 03.44초, 북위 37도 14분 06.39초 동경 129도 28분 41.81초, 북위 37도 40분 23.47초 동경 129도 10분 48.48초, 북위 38도 26분 52.66초 동경 128도 35분 36.41초와 북위 38도 41분 14.63초 동경 128도 21분 31.94초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다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사라말 이북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말 이남까지의 해역 중 북위 35도 59분 29.73초 동경 129도 37분 44.64초, 북위 36도 04분 39.45초 동경 129도 37분 47.89초, 북위 36도 13분 23.87초 동경 129도 33분 02.30초, 북위 36도 30분 26.85초 동경 129도 31분 59.83초, 북위 37도 03분 39.27초 동경 129도 31분 50.65초, 북위 37도 14분 09.91초 동경 129도 27분 28.86초, 북위 37도 40분 23.47초 동경 129도 09분 37.09초와 북위 38도 26분 54.65초 동경 128도 33분 08.00초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밖의 해역에서 소형선망어업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3)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가. 북위 34도 40분 50.30초 동경 128도 34분 43.47초
- 나. 북위 34도 23분 39.76초 동경 127도 49분 11.33초
- 다. 북위 33도 57분 52.83초 동경 127도 20분 25.54초
- 라. 북위 34도 05분 52.80초 동경 126도 36분 08.70초

주4) 대형선망어업 및 소형선망어업의 멸치 포획금지구역(부도 1 제1호 참조)

가. 다음 좌표를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1) 북위 36도 06분 38.30초 동경 129도 26분 22.99초
- 2) 북위 36도 05분 06.28초 동경 129도 32분 50.36초

나. 다음 좌표를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1) 북위 35도 59분 29.63초 동경 129도 34분 05.54초
- 2) 북위 35도 51분 12.35초 동경 129도 31분 32.91초

다.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1) 북위 35도 39분 04.22초 동경 129도 27분 04.06초
- 2) 북위 35도 38분 51.36초 동경 129도 28분 21.94초
- 3) 북위 35도 29분 10.31초 동경 129도 27분 48.32초
- 4) 북위 35도 21분 11.21초 동경 129도 22분 59.49초
- 5) 북위 35도 10분 53.70초 동경 129도 13분 49.21초
- 6) 북위 35도 02분 20.04초 동경 129도 06분 24.37초
- 7) 북위 34도 51분 54.45초 동경 128도 47분 02.99초
- 8) 북위 34도 47분 12.12초 동경 128도 45분 36.17초

- 9) 북위 34도 42분 44.26초 동경 128도 41분 26.29초
- 10) 북위 34도 40분 54.36초 동경 128도 37분 13.15초
- 11) 북위 34도 40분 50.30초 동경 128도 34분 43.47초
- 12) 북위 34도 41분 34.23초 동경 128도 27분 25.94초
- 13) 북위 34도 41분 37.59초 동경 128도 23분 50.15초
- 14) 북위 34도 44분 44.48초 동경 128도 18분 10.59초
- 15) 북위 34도 42분 40.76초 동경 128도 10분 31.23초
- 16) 북위 34도 39분 46.65초, 동경 128도 02분 44.04초
- 17) 북위 34도 42분 14.11초 동경 127도 53분 26.09초
- 18) 북위 34도 37분 36.42초 동경 127도 51분 15.99초
- 19) 북위 34도 24분 02.47초 동경 127도 47분 04.20초
- 20) 북위 34도 12분 44.14초 동경 127도 15분 26.78초
- 21) 북위 34도 08분 48.32초 동경 126도 54분 00.00초
- 22) 북위 34도 05분 01.96초 동경 126도 40분 12.78초
- 23) 북위 34도 05분 52.80초 동경 126도 36분 08.70초
- 24) 북위 34도 07분 19.07초 동경 126도 30분 43.10초
- 25) 북위 34도 13분 22.96초 동경 126도 25분 06.59초
- 26) 북위 34도 18분 42.20초 동경 126도 05분 16.10초
- 27) 북위 34도 25분 07.09초 동경 126도 05분 21.33초

라. 다음 좌표를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1) 북위 34도 35분 19.76초 동경 126도 14분 59.45초
- 2) 북위 34도 40분 45.54초 동경 126도 15분 18.81초

마.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1) 북위 34도 04분 10.64초 동경 127도 16분 21.12초
- 2) 북위 34도 02분 11.97초 동경 127도 15분 35.82초
- 3) 북위 34도 00분 07.41초 동경 127도 16분 43.46초
- 4) 북위 34도 02분 22.60초 동경 127도 21분 15.05초
- 5) 북위 34도 04분 23.88초 동경 127도 20분 11.15초
- 6) 북위 34도 04분 53.18초 동경 127도 17분 34.56초
- 7) 북위 34도 04분 10.64초 동경 127도 16분 21.12초

바.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1) 북위 34도 14분 07.54초 동경 126도 53분 21.37초
- 2) 북위 34도 13분 08.91초 동경 126도 55분 44.16초
- 3) 북위 34도 11분 20.39초 동경 126도 57분 06.92초
- 4) 북위 34도 10분 38.80초 동경 126도 56분 47.26초
- 5) 북위 34도 08분 11.55초 동경 126도 50분 32.62초
- 6) 북위 34도 12분 44.65초 동경 126도 49분 30.95초
- 7) 북위 34도 14분 07.54초 동경 126도 53분 21.37초

사.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1) 북위 34도 16분 08.14초 동경 126도 36분 45.06초
- 2) 북위 34도 10분 52.74초 동경 126도 42분 25.01초
- 3) 북위 34도 08분 54.72초 동경 126도 42분 17.71초
- 4) 북위 34도 06분 01.99초 동경 126도 40분 41.16초
- 5) 북위 34도 04분 47.89초 동경 126도 36분 09.00초
- 6) 북위 34도 06분 29.15초 동경 126도 29분 53.23초
- 7) 북위 34도 16분 01.40초 동경 126도 33분 47.38초
- 8) 북위 34도 16분 08.14초 동경 126도 36분 45.06초

아.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1) 북위 33도 59분 06.56초 동경 126도 15분 00.93초
- 2) 북위 33도 58분 50.32초 동경 126도 21분 05.28초
- 3) 북위 33도 56분 56.83초 동경 126도 21분 52.61초
- 4) 북위 33도 54분 53.81초 동경 126도 19분 37.63초
- 5) 북위 33도 59분 06.56초 동경 126도 15분 00.93초

주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남면 금오도, 남면 안도, 남면 연도 및 완도군 청산면 청산도의 해안선으로부터 550미터 선 안의 해역

주6) 북위 34도 59분 19.02초 동경 128도 49분 42.30초와 북위 34도 53분 43.48초 동경 128도 45분 06.82초를 연결한 선과 북위 34도 53분 22.50초 동경 128도 28분 32.43초 및 북위 34도 53분 06.80초 동경 128도 28분 40.60초를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주7) 주6)의 해역을 제외한 경상남도의 해역과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해역

주8) 근해자망어업 및 연안자망어업의 멸치 포획금지구역(부도 1 제2호 참조)

가. 다음 좌표를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1) 북위 36도 06분 38.30초 동경 129도 26분 22.99초
- 2) 북위 36도 05분 06.28초 동경 129도 32분 50.36초

나. 다음 좌표를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1) 북위 35도 59분 29.63초 동경 129도 34분 05.54초
- 2) 북위 35도 51분 12.35초 동경 129도 31분 32.91초

다.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1) 북위 35도 39분 04.22초 동경 129도 27분 04.06초
- 2) 북위 35도 38분 51.36초 동경 129도 28분 21.94초
- 3) 북위 35도 29분 10.31초 동경 129도 27분 48.32초
- 4) 북위 35도 21분 11.21초 동경 129도 22분 59.49초
- 5) 북위 35도 10분 52.97초 동경 129도 14분 28.70초
- 6) 북위 35도 01분 36.28초 동경 129도 06분 09.92초

- 7) 북위 34도 58분 41.68초 동경 128도 59분 19.23초
- 8) 북위 34도 53분 42.06초 동경 128도 47분 43.97초
- 9) 북위 34도 47분 12.12초 동경 128도 45분 36.17초
- 10) 북위 34도 42분 44.26초 동경 128도 41분 26.29초
- 11) 북위 34도 40분 54.36초 동경 128도 37분 13.15초
- 12) 북위 34도 40분 50.30초 동경 128도 34분 43.47초
- 13) 북위 34도 41분 34.23초 동경 128도 27분 25.94초
- 14) 북위 34도 41분 37.59초 동경 128도 23분 50.15초
- 15) 북위 34도 44분 44.48초 동경 128도 18분 10.59초
- 16) 북위 34도 42분 40.76초 동경 128도 10분 31.23초
- 17) 북위 34도 39분 46.65초 동경 128도 02분 44.04초
- 18) 북위 34도 42분 14.11초 동경 127도 53분 26.09초
- 19) 북위 34도 37분 36.42초 동경 127도 51분 15.99초
- 20) 북위 34도 31분 52.23초 동경 127도 50분 31.33초
- 21) 북위 34도 23분 39.76초 동경 127도 49분 11.33초
- 22) 북위 34도 24분 03.98초 동경 127도 46분 17.71초
- 23) 북위 34도 29분 25.93초 동경 127도 44분 08.71초
- 24) 북위 34도 32분 21.21초 동경 127도 38분 22.27초
- 25) 북위 34도 34분 25.25초 동경 127도 29분 13.34초

라.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1) 북위 34도 31분 07.80초 동경 127도 10분 14.07초
- 2) 북위 34도 26분 43.54초 동경 126도 57분 57.49초
- 3) 북위 34도 24분 15.40초 동경 126도 58분 04.52초
- 4) 북위 34도 24분 15.68초 동경 126도 57분 04.19초

마. 북위 34도 21분 12.07초 동경 126도 54분 30.30초와 북위 34도 20분 32.26초 동경 126도 53분 56.87초를 연결한 선, 북위 34도 18분 55.34초 동경 126도 47분 38.20초와 북위 34도 17분 15.62초 동경 126도 46분 39.59초를 연결한 선 및 북위 34도 23분 11.21초 동경 126도 38분 35.73초와 북위 34도 23분 14.89초 동경 126도 38분 13.76초를 연결한 선 안의 해역

바.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1) 북위 34도 04분 16.23초 동경 127도 16분 02.82초
- 2) 북위 34도 02분 16.01초 동경 127도 14분 57.14초
- 3) 북위 33도 58분 58.74초 동경 127도 15분 20.59초
- 4) 북위 33도 57분 52.83초 동경 127도 20분 25.54초
- 5) 북위 34도 02분 31.34초 동경 127도 23분 14.40초
- 6) 북위 34도 04분 34.91초 동경 127도 20분 26.45초
- 7) 북위 34도 04분 36.95초 동경 127도 17분 34.51초
- 8) 북위 34도 04분 16.23초 동경 127도 16분 02.82초

주9) 북위 34도 45분 14.58초 동경 127도 39분 41.38초, 북위 34도 44분 26.13초 동경 127도 39분 48.15초, 북위 34도 42분 41.26초 동경 127도 42분 03.74초, 북위 34도 41분 00.32초 동경 127도 38분 21.35초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과 북위 34도 03분 46.49초 동경 127도 18분 21.56초와 북위 34도 03분 48.55초 동경 127도 17분 35.12초를 연결한 선과 북위 34도 00분 19.18초 동경 127도 19분 29.65초와 북위 34도 01분 59.90초 동경 127도 19분 53.48초를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주1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저진단과 그 지점에서 정동 3만7천미터의 점,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단에서 정동 3만7천미터의 점,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말 동쪽 끝에서 정동 3만7천미터의 점, 강원특별자치도와 경상북도의 도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정동 3만7천미터의 점, 강원특별자치도와 경상북도의 도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주11)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부도 2 참조)

- 가. 북위37도08분37초 동경129도21분52초
- 나. 북위37도08분37초 동경129도45분12초
- 다. 북위37도06분12초 동경129도45분12초
- 라. 북위36도41분27초 동경129도51분24초
- 마. 북위36도28분18초 동경129도53분08초
- 바. 북위36도19분30초 동경129도51분06초
- 사. 북위36도11분13초 동경129도48분48초
- 아. 북위36도06분57초 동경129도45분44초
- 자. 북위35도58분46초 동경129도44분01초
- 차. 북위35도55분37초 동경129도43분14초
- 카. 북위35도49분04초 동경129도44분27초
- 타. 북위35도46분01초 동경129도46분21초
- 파. 북위35도39분00초 동경130도00분15초
- 하. 북위35도39분00초 동경129도26분52초

주12) 다음 좌표를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가. 북위 34도 44분 21.48초 동경 127도 33분 53.43초
- 나. 북위 34도 40분 58.22초 동경 127도 26분 43.88초

주13) 다음 좌표를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가. 북위 34도 39분 05.89초 동경 127도 11분 47.23초
- 나. 북위 34도 41분 31.68초 동경 127도 10분 31.29초

주14)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가. 북위 35도 15분 02.07초 동경 126도 18분 29.78초

- 나. 북위 35도 18분 01.04초 동경 126도 08분 28.59초
 다. 북위 35도 34분 14.87초 동경 126도 15분 44.35초
 라. 북위 35도 23분 00.39초 동경 126도 23분 53.12초

주15)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부도 3 참조)

- 가. 북위33도24분40초 동경126도12분15초
 나. 북위33도25분09초 동경126도12분23초
 다. 북위33도25분37초 동경126도13분00초
 라. 북위33도25분38초 동경126도13분47초
 마. 북위33도10분23초 동경126도15분27초
 바. 북위33도09분36초 동경126도15분18초
 사. 북위33도09분05초 동경126도16분17초
 아. 북위33도09분38초 동경126도16분50초
 자. 북위33도09분45초 동경126도17분24초
 차. 북위33도10분18초 동경126도17분49초
 카. 북위33도31분17초 동경126도56분09초
 타. 북위33도31분50초 동경126도57분18초
 파. 북위33도30분55초 동경126도58분35초
 하. 북위33도29분53초 동경126도58분53초
 거. 북위33도28분59초 동경126도57분47초

주16)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부도 4 참조)

- 가. 북위37도36분00초 동경126도12분20초
 나. 북위37도23분30초 동경126도20분40초
 다. 북위37도20분00초 동경126도23분30초
 라. 북위37도12분20초 동경126도23분30초
 마. 북위37도10분05초 동경126도30분00초
 바. 북위37도07분15초 동경126도30분00초
 사. 북위37도05분30초 동경126도22분00초
 아. 북위36도55분00초 동경126도06분30초
 자. 북위36도48분00초 동경126도03분50초
 차. 북위36도41분10초 동경126도05분35초
 카. 북위36도38분00초 동경126도05분30초
 타. 북위36도33분30초 동경126도14분30초
 파. 북위36도19분20초 동경126도19분50초
 하. 북위36도18분05초 동경126도26분50초
 거. 북위35도51분00초 동경126도28분00초
 너. 북위35도49분40초 동경126도21분30초
 더. 북위35도48분10초 동경126도21분50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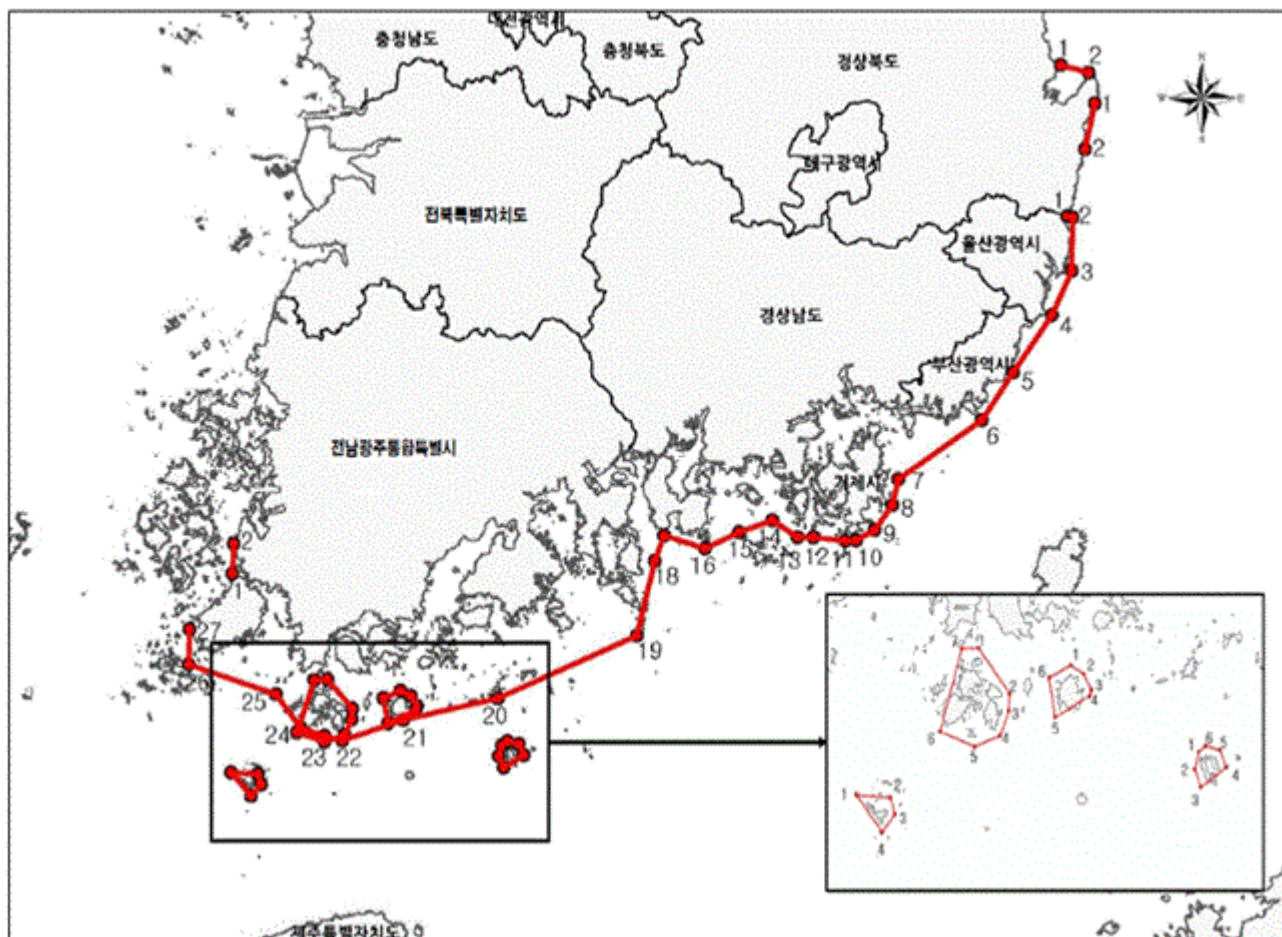
러. 북위35도47분10초 동경126도25분00초
 머. 북위35도39분20초 동경126도24분20초
 버. 북위35도23분30초 동경126도20분50초
 서. 북위35도16분20초 동경126도15분00초
 어. 북위35도12분50초 동경126도10분00초

주17)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부도 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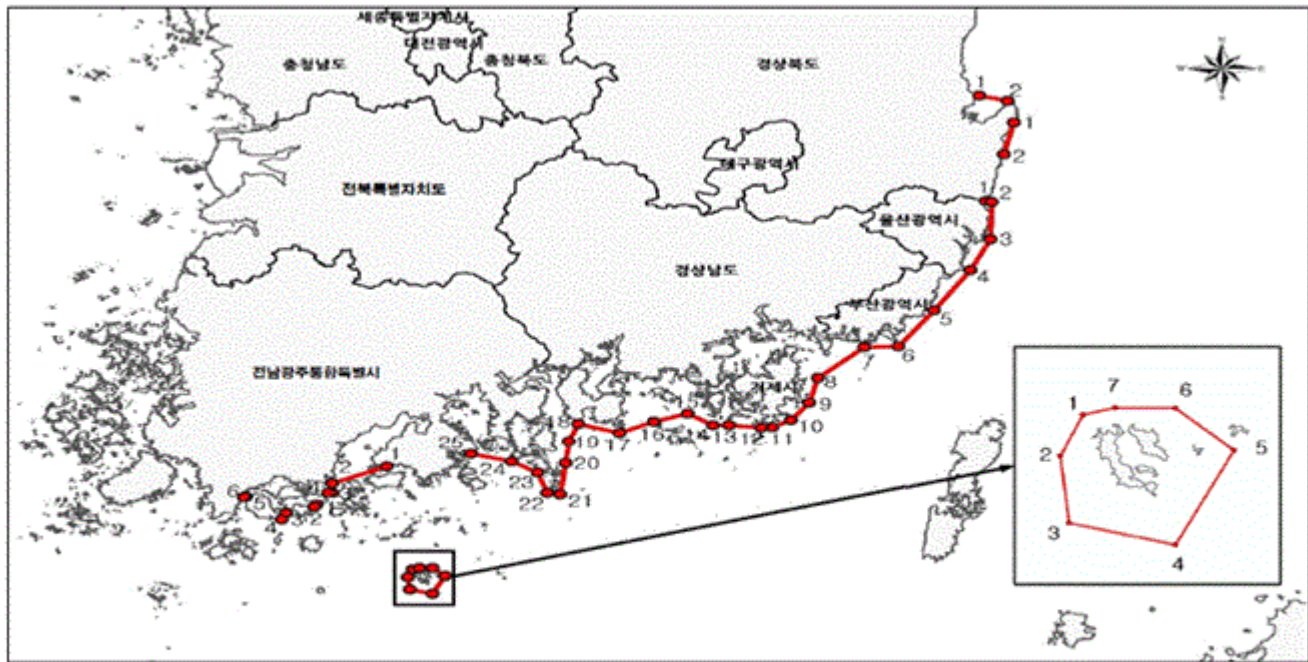
가. 북위37도30분00초 동경126도00분00초
 나. 북위37도31분20초 동경126도03분02초
 다. 북위37도30분00초 동경126도03분02초
 라. 북위37도30분00초 동경126도16분21초
 마. 북위37도23분30초 동경126도20분40초
 바. 북위37도19분38초 동경126도13분22초
 사. 북위37도18분15초 동경126도03분55초
 아. 북위37도09분40초 동경126도04분25초
 자. 북위37도06분50초 동경126도07분45초
 차. 북위37도05분30초 동경126도22분00초

[부도 1] <개정 2026. 6. 23.>

1. 대형선망어업 및 소형선망어업의 멸치 포획금지구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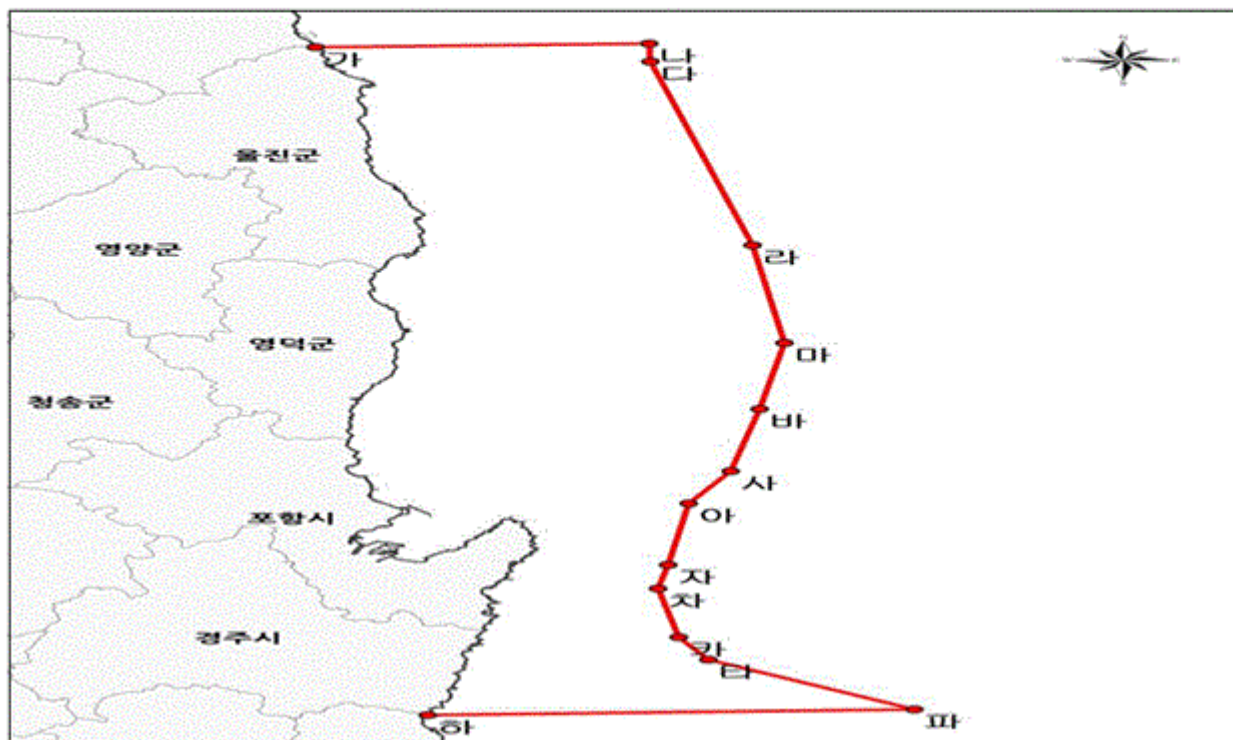


2. 근해자망어업 및 연안자망어업의 멸치 포획금지구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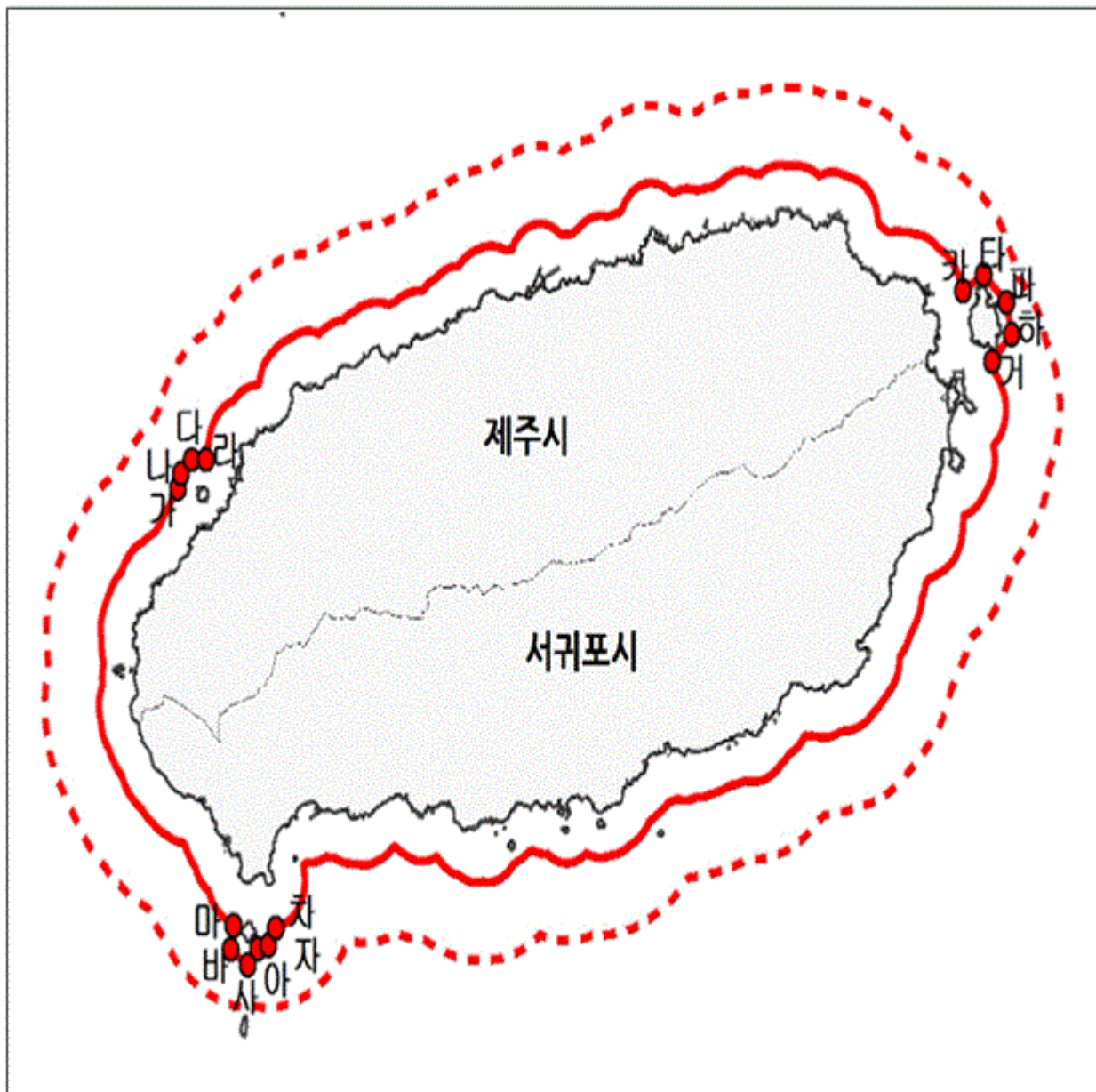
[부도 2]

근해장어통발어업 · 근해통발어업 및 연안통발어업의 대게 포획금지, 대게류 · 붉은대게류 통발 사용금지 구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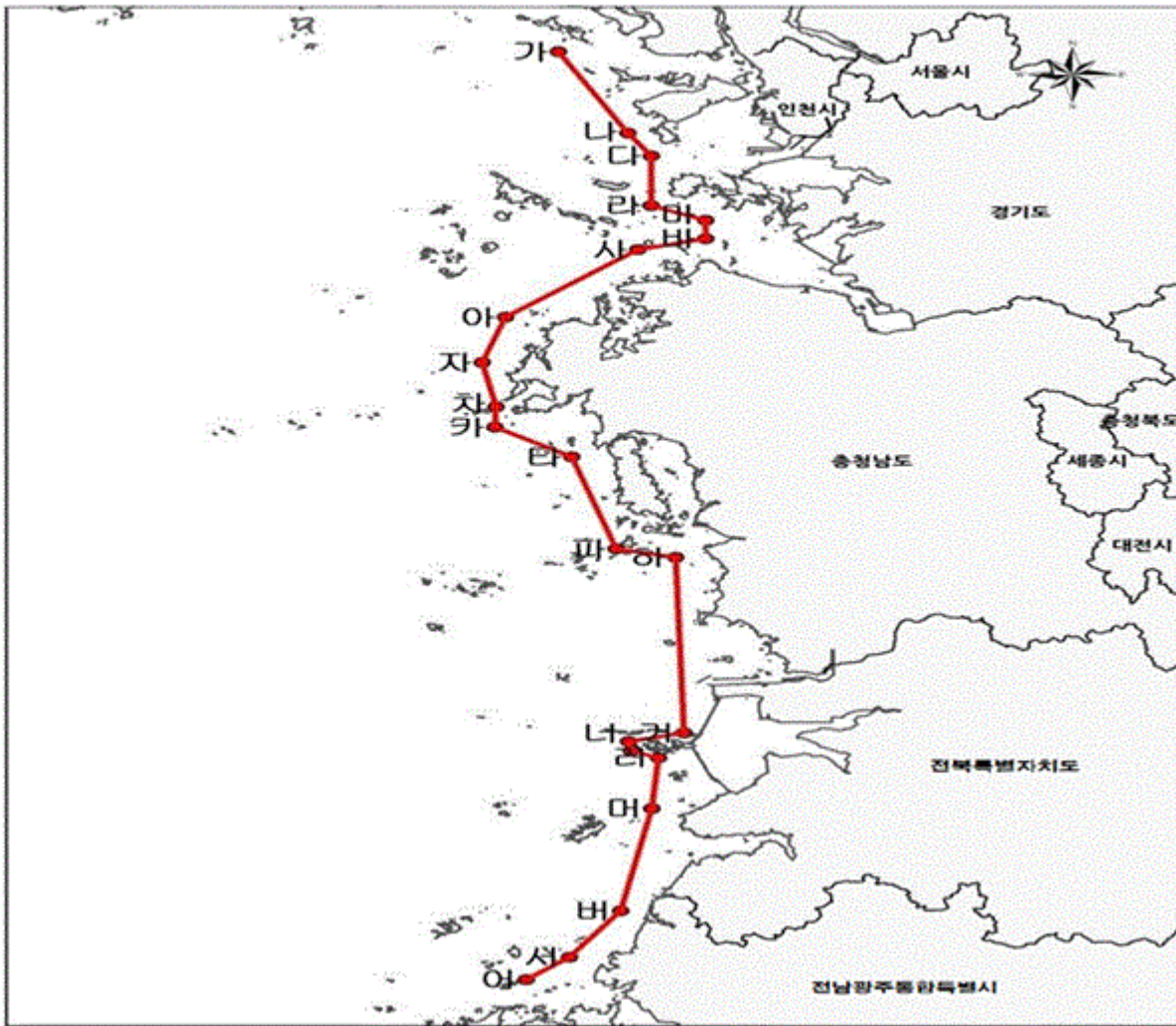


[부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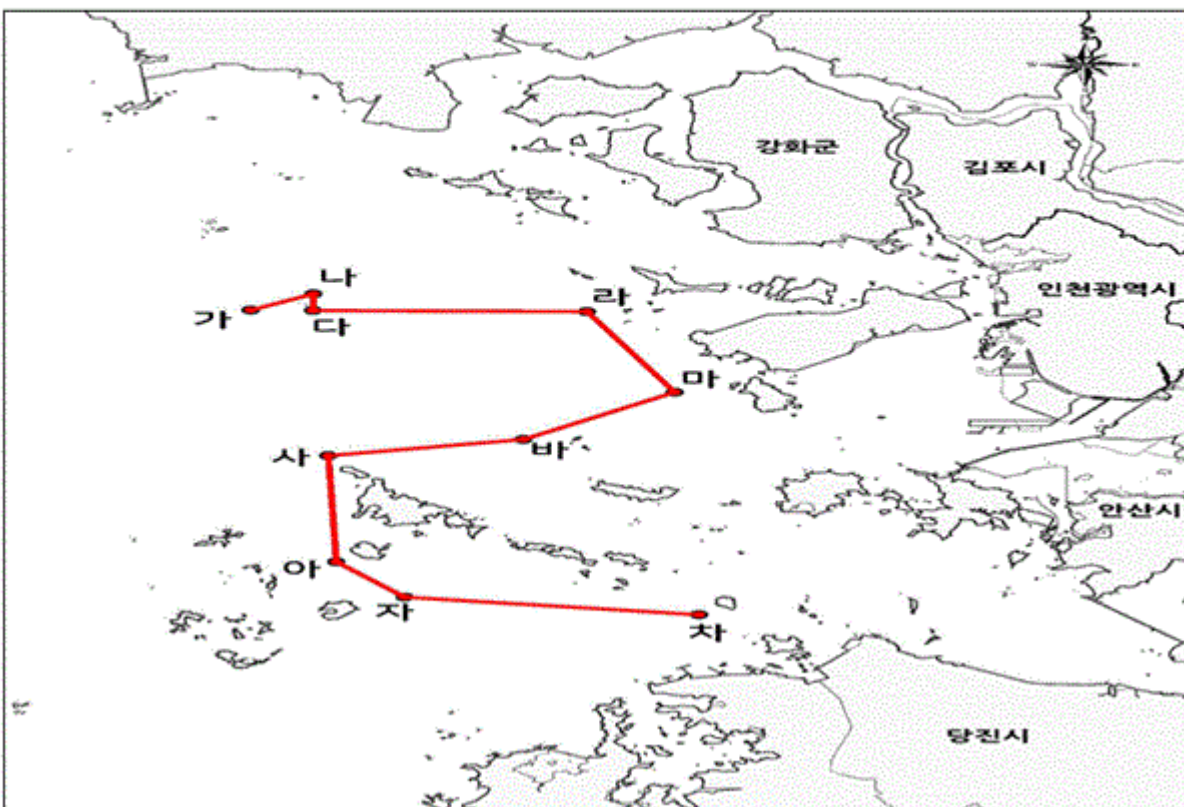
| 구분 | 범례 |
|------------------------------------|---|
| 제주특별자치도 본도 주위 2천7백미터 이내 및 주15)의 해역 |  |
| 제주특별자치도 본도 주위 7천4백미터 이내 해역 |  |



[부도 4] <개정 2026. 6. 23.>



[부도 5]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8]

어업의 종류별 그물코 규격의 제한(제38조제3항 관련)

1. 근해어업

| 어업의 종류 | 주로 포획하는 어종 |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 | 비고 |
|--|------------|--------------|--|
| 가.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 | 33밀리미터 이하 | 자루그물 부분에는 2중 이상 어망 사용금지 |
| 나.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 | 54밀리미터 이하 | 자루그물 부분에는 2중 이상 어망 사용금지 |
| 다.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 | 33밀리미터 이하 | 자루그물 부분에는 2중 이상 어망 사용금지 |
| 라. 대형트롤어업 | | 54밀리미터 이하 | 자루그물 부분에는 2중 이상 어망 사용금지 |
| 마. 동해구중형트롤어업 | | 43밀리미터 이하 | 자루그물 부분에는 2중 이상 어망 사용금지 |
| 바. 대형선망어업 | | 30밀리미터 이하 | |
| 사. 소형선망어업 | | 30밀리미터 이하 | 멸치를 포획할 목적으로 세목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을 적용하지 않음. |
| 아. 근해자망어업 | 삼치 | 100밀리미터 이하 | 1) 2중 이상의 자망 중 내망의 그물코의 규격이 40밀리미터 이하는 사용금지
2) 멸치, 갯새우, 곤쟁이를 포획할 목적으로 세목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을 적용하지 않음. |
| | 조기류 | 50밀리미터 이하 | |
| | 대게 | 240밀리미터 이하 | |
| 자. 근해안강망어업 | | 35밀리미터 이하 | 1) 자루그물 부분에는 2중 이상 어망 사용금지
2) 멸치, 반지, 밴댕이, 뱀 |

| | | | |
|-------------|---------|------------|--|
| | | | 장어, 곤쟁이, 까나리, 배도라치, 새우류, 꼴뚜기, 주꾸미를 포획할 목적으로 세목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을 적용하지 않음. |
| 차. 근해장어통발어업 | | 35밀리미터 이하 |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한 그물코가 없는 통발은 제외함. |
| 카. 근해통발어업 | 대게 | 150밀리미터 이하 | 그물로 제작한 통발 입구 안쪽에 붙이는 갈때기 모양의 그물에는 적용하지 않음. |
| | 붉은 대게 | 125밀리미터 이하 | 1) 울산광역시와 경상북도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선 이북의 동해로 한정함.
2) 그물로 제작한 통발 입구 안쪽에 붙이는 갈때기 모양의 그물에는 적용하지 않음. |
| | 그 밖의 어종 | 35밀리미터 이하 | 1) 그물로 제작한 통발 입구안쪽에 붙이는 갈때기 모양의 그물에는 적용하지 않음.
2)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해서 그물형태로 제작한 통발을 포함함. |

2. 연안어업

| 어업의 종류 | 주로 포획하는 어종 |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 | 비고 |
|--------------|------------|--------------|---|
| 가. 연안개량안강망어업 | | 25밀리미터 이하 | 1) 연안안강망 및 연안 낚장망은 제외함.
2) 자루그물 부분에는 2종 이상 어망 사용금지 |

| | | | |
|-----------|--------------------|------------|---|
| 나. 연안선망어업 | | 15밀리미터 이하 | 멸치를 포획할 목적으로 세목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을 적용하지 않음. |
| 다. 연안통발어업 | 붕장어,
낙지,
새우류 | 22밀리미터 이하 | 1) 통발 입구에 부착된 깔때기 모양의 그물의 입구 중 가장 작은 것의 둘레 길이가 140밀리미터 이상인 것은 사용금지
2) 그물로 제작한 통발 입구 안쪽에 붙이는 깔때기 모양의 그물에는 적용하지 않음.
3)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해서 그물형태로 제작한 통발을 포함함.
4)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한 그물코가 없는 통발은 적용하지 않음. |
| | 대게 | 150밀리미터 이하 | 그물로 제작한 통발 입구 안쪽에 붙이는 깔때기 모양의 그물에는 적용하지 않음. |
| | 붉은
대게 | 125밀리미터 이하 | 1) 울산광역시와 경상북도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선 이북의 동해로 한정함.
2) 그물로 제작한 통발 입구 안쪽에 붙이는 깔때기 모양의 그물에는 적용하지 않음. |
| | 그 밖의
어종 | 35밀리미터 이하 | 1) 그물로 제작한 통발 입구 안쪽에 붙이는 깔때기 모양의 그물에는 적용하지 않음.
2) 플라스틱 재질을 사 |

| | | | |
|------------|-----|------------|---|
| | | | 용해서 그물형태로 제작한 통발을 포함함. |
| 라. 연안조망어업 | | 25밀리미터 이하 | 자루그물 부분에는 2중 이상 어망 사용금지 |
| 마. 연안선인망어업 | | 15밀리미터 이하 | 멸치를 포획할 목적으로 세목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을 적용하지 않음. |
| 바. 연안자망어업 | 삼치 | 100밀리미터 이하 | 1) 2중 이상의 자망 중 내망의 그물코의 규격은 40밀리미터 이하 사용금지
2) 멸치, 갯새우, 곤쟁이를 포획할 목적으로 세목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을 적용하지 않음. |
| | 조기류 | 50밀리미터 이하 | |
| | 대게 | 240밀리미터 이하 | |

3. 구획어업

| 어업의 종류 | 주로 포획하는 어종 |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 | 비고 |
|--|------------|--------------|--|
| 가. 장망류어업(영광군에서 주목망을 사용하는 어업) | | 25밀리미터 이하 | |
| 나. 장망류어업(영광군에서 주목망을 사용하는 어업), 패류형망어업 외의 구획어업 | | 15밀리미터 이하 | 멸치, 빙어, 보리멸, 문절망둑, 싱어, 반지, 뱀뱀이, 황강달어, 뱀장어, 갯장어, 붕장어, 갯새우 및 곤쟁이를 포획할 목적으로 세목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을 적용하지 않음. |

비고

1. “그물코의 규격”이란 그물코를 잡아당겨서 켜 안쪽 지름의 길이를 말한다.
2. 어업의 특성상 해파리 배출망 및 포유류 혼획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설치가

를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이 표에 따른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을 적용하지 않는다.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9]

어업 종류별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범위(제39조제1항 관련)

| 어업
종류 | 주로
포획
하는
어종 | 어구
사용량 | 어구의
규모 및 형태 | 비고 |
|----------|----------------------|--|--|--|
| 연안
통발 | 낙지 | 5,000개
(통발의
설치
간격은
10미터
이내)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발의 가로·세로·높이·지름은 각각 12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2. 갈때기 모양의 그물입구 중 가장 작은 것의 둘레길이는 140밀리미터 미만으로 한다. 3. 그물로 제작한 통발 입구 안쪽에 붙이는 갈때기 모양의 그물에 대해서는 별표 8 제2호다목에 따른 그물코의 규격을 적용하지 않는다. | <p>가. 낙지 외의 어종은 방류해야 한다.</p> <p>나. 해당 어구를 사용하는 어업자는 그 어구 외에 별표 2 제3호다목에서 정한 일반 통발어구를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된다.</p> <p>다. 포획된 낙지는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에서 판매 또는 교환해야 한다.</p> |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어업보상에 대한 손실액의 산출방법, 산출기준 및 손실액산출기관 등(제55조 관련)

1. 어업별 손실액 산출방법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법 제34조제6호(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권이 제한·정지 또는 취소되었거나 그 사유로 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 1) 어업권이 제한된 경우: 평년수익액과 제한기간이나 제한 정도 등을 고려해서 산출한 손실액. 다만, 3)에 따른 보상액을 초과할 수 없다.
- 2) 어업권이 정지된 경우: 평년수익액 × 어업의 정지기간 + 시설물 등 또는 양식물의 이전·수거 등에 드는 손실액 + 어업의 정지기간 중에 발생하는 통상의 고정적 경비. 다만, 3)에 따른 보상액을 초과할 수 없다.
- 3) 어업권이 취소되었거나 어업권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평년수익액 ÷ 연리(12퍼센트) +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

나.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법 제34조제6호(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이 제한·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다만, 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이 제한된 경우는 제외한다.

- 1)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이 제한되는 경우: 어업의 제한기간 또는 제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손실액. 다만, 3)에 따른 보상액을 초과할 수 없다.
- 2)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이 정지된 경우(어선의 계류를 포함한다): 평년수익액 × 어업의 정지기간 또는 어선의 계류기간 + 어업의 정지기간 또는 어선의 계류기간 중에 발생하는 통상의 고정적 경비. 다만, 3)에 따른 보상액을 초과할 수 없다.
- 3)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이 취소된 경우: 3년분 평년수익액 +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

다.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측량·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에 대한 이전 또는 제거 명령을 받고 이전 또는 제거를 한 경우와 「수산자원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소하성어류의 통로에 방해가 되는 물건에 대한 제거 명령을 받고 제거 공사를 한 경우: 물건의 이전 또는 제거 공사에 드는 비용과 이전 또는 제거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실

2. 어업별 손실액 산출방법에 관련된 용어의 정의 및 산출기준

가. 면허어업,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손실액 산출방법에서 “평년수익액”이란 평균 연간어획량을 평균 연간판매단가로 환산한 금액에서 평년어업경비를 뺀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 연간어획량, 평균 연간판매단가 및 평년어업경비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평균 연간어획량의 산출기준

가) 3년 이상의 어획실적이 있는 경우: 법 제104조제2항 및 「수산자원관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보고된 어획실적, 양륙량(선박으로부터 수산물 등을 육상으로 옮긴 양을 말한다) 또는 판매실적(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을 받은 자가 보고된 실적 이상의 어획실적 등이 있었음을 증거서류로 증명한 경우에는 그 증명된 실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산출한 최근 3년 동안의 평균어획량으로 하되, 최근 3년 동안의 어획량은 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로 기준연도로 하여 소급기산(起算)한 3년 동안(소급 기산한 3년의 기간 동안 일시적인 해양환경의 변화로 연평균어획실적의 변동폭이 전년도에 비하여 1.5배 이상이 되거나 휴업·어장정비 등으로 어획실적이 없어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3년 동안의 평균어획량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만큼 소급하여 기산한 3년 동안을 말한다)의 어획량을 연평균한 어획량으로 한다.

나) 3년 미만의 어획실적이 있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추정 평균어획량

- (1) 면허어업: 해당 어장의 실적기간 중의 어획량 × 인근 같은 종류의 어업의 어장(통상 2개소)의 3년 평균어획량 ÷ 인근 같은 종류의 어업의 어장의 해당 실적기간 중의 어획량
- (2)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 해당 어업의 실적기간 중의 어획량 × 같은 규모의 같은 종류의 어업(통상 2건)의 3년 평균어획량 ÷ 같은 규모의 같은 종류의 어업의 해당 실적기간 중의 어획량. 다만, 같은 규모의 같은 종류의 어업의 어획량이 없으면 비슷한 규모의 같은 종류의 어업의 어획량을 기준으로 3년 평균어획량을 계산한다.

비고

1. (1) 및 (2)의 계산식에서 실적기간은 실제 어획실적이 있는 기간으로 하되, 같은 규모 또는 비슷한 규모의 같은 종류의 어업의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의 실제 어획실적이 있는 기간과 같은 기간의 실제 어획실적을 말한다.

2. 어획량의 기본단위는 킬로그램을 원칙으로 하되, 어획물의 특성에

따라 생물(生物)의 중량 또는 건중량(乾重量)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김은 마른 김 1속을 기준으로 한다.

2) 평균 연간판매단가의 산출기준

가) 평균 연간판매단가는 보상액 산정을 위한 평가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기산한 1년 동안의 수산물별 평균 판매단가[해당 수산물이 계통출하(系統出荷)된 주된 위판장의 수산물별·품질등급별 판매량을 수산물별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평균 판매단가를 말한다]로 한다.

나) 계통출하된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등의 평균 연간판매단가는 가)의 평균 연간판매단가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계통출하된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른 가격을 기준으로 평균 연간판매단가를 계산한다.

(가) 해당 지역 인근의 수산업협동조합의 위판가격

(나) 해당 지역 인근의 수산물도매시장의 경락가격

(2) 소급 기산한 1년의 기간 동안 어획물의 일시적인 흉작·풍작 등으로 어가(魚價)의 연평균 변동폭이 전년도에 비하여 1.5배 이상이 되어 가)의 평균 연간판매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소급 기산한 최초의 1년이 되는 날부터 다시 소급하여 기산한 1년 동안의 평균 판매단가에 소급하여 기산한 최초의 1년 동안의 수산물 계통출하 판매가격의 전국 평균 변동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평년어업경비의 산출기준

평년어업경비는 보상액 산정을 위한 평가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1년 동안 소급하여 기산한 해당 어업의 연간 어업경영에 필요한 경비로 하되, 경비 항목 및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경비항목

| 구 분 | 경 비 항 목 |
|------------|--|
| 1. 생산관리비 | ① 어미고기 및 수산종자 구입비 ② 미끼구입비 ③ 사료비 ④ 유지보수비 ⑤ 연료 및 유류비 ⑥ 전기료 ⑦ 약품비 ⑧ 소모품비 ⑨ 어장관리비[어장 청소, 해적생물(害敵生物) 구제(驅除) 및 표지시설 설치 등] ⑩ 자원조성비 ⑪ 용선료(傭船料) |
| 2. 인건비 | ① 어업자 본인의 인건비 ② 본인 외의 사람에 대한 인건비 |
| 3. 감가상각비 | ① 시설물 ② 어선 또는 관리선(선체, 기관 및 어선에 장치된 설비품 등을 포함한다) ③ 어구 ④ 그 밖의 장비 및 도구 |
| 4. 판매관리비 | ① 가공비 ② 보관비 ③ 용기대 ④ 판매수수료 ⑤ 판매경비(운반·포장 등) |
| 5. 그 밖의 경비 | ① 각종 세금과 공과금 ② 어장행사료 ③ 주식·부식비 ④ 복리후생비 ⑤ 보험료 및 공제료 ⑥ 그 밖의 경비 |

나) 산출방법

- (1) 평년어업경비는 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비항목별로 계산하되, 규정된 경비항목 외의 경비가 있으면 그 밖의 경비항목에 포함시켜 전체 평년어업경비가 산출되도록 해야 한다.
- (2) 경비항목별 경비 산출은 어선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신고사항, 포획·채취물의 판매실적, 유류 사용량, 임금정산서, 보험료 및 공제료, 세금납부실적,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에 따른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 수집 가능한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하고 현지조사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 다만, 인건비, 감가상각비 및 판매관리비 중 판매수수료의 산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인건비 중 어업자 본인의 인건비는 본인 외의 사람의 인건비의 평균단가를 적용하고, 본인 외의 사람의 인건비는 현실단가를 적용하되, 어업자가 직접 경영하여 본인 외의 자의 인건비가 없으면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공포한 제조부문 보통인부의 임금단가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어업에 대한 인건비는 투입된 노동시간을 고려하여 계산해야 한다.
- (나) 감가상각비는 신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도록 계산해야 한다. 이 경우 어선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율은 다음과 같이 하되, 어선의 유지·관리 상태를 고려하여 이를 단축·축소할 수 있다.

| 선질별 | 내용연수(년) | 잔존가치율(%) |
|--------------|---------|----------|
| 강선 | 25 | 20 |
| 강화플라스틱(FRP)선 | 20 | 10 |
| 목선 | 15 | 10 |

(다) 판매관리비 중 판매수수료는 해당 어선의 주된 양륙지 또는 어업장이 속한 지역에 있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위판수수료율을 적용한다.

(3) 생산관리비 중 소모품비와 감가상각비의 적용대상 구분은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여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것은 감가상각비로, 1년 미만인 것은 소모품비로 한다.

(4) 수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종자 살포, 시설물의 철거 등 어업자의 의무사항은 어장면적 및 경영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산해야 한다.

(5) 산출된 경비가 일시적인 요인으로 통상적인 경우보다 변동폭이 1.5배 이상이 되어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인근 비슷한 규모의 같은 종류의 어업(같은 종류의 어업이 없는 경우에는 비슷한 어업) 2개 이상을 조사하여 평균치를 적용할 수 있다.

(6) 어업생산주기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 수산종자 구입비, 사료비, 어장관리비 및 판매관리비 등 생산주기와 연계되는 경비항목에 대해서는 생산주기로 나누어 연간 평균 어업경비를 계산해야 한다. 이 경우 생산주기는 국립수산과학원의 관할 연구소와 협의해서 정한다.

나. 면허어업,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손실액 산출방법에서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이란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한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잔존가액은 보상을 받으려는 자가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을 재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보상을 신청하지 않으면 손실액 산출에서 제외한다.

다. 면허어업,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손실액산출방법에서 “통상의 고정적 경비”란 어업의 정지기간 중 또는 어선의 계류기간 중에 해당 시설물 또는 어선·어구를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경비를 말한다.

3.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에 관한 예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업실적이 없어 제1호 및 제2호의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방법 및 산출기준 등에 따라 어업별 손실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의 어업별 손실액은 어업의 면허·허가 또는

신고에 드는 인지세·등록세 등의 모든 경비와 해당 어업의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매각이나 이전에 따른 손실액으로 한다.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34조제6호(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을 처분하여 어업실적이 없는 경우. 다만, 법 제8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이 제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그 밖에 법 제29조에 따른 휴업, 재해복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기관 등

가.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기관

- 1) 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을 한 행정기관: 제52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서류로 어업별 손실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 2) 전문기관: 제52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서류로 어업별 손실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나. 전문기관에 의한 손실액의 산출 등

- 1) 행정관청은 제52조제1항에 따른 서류로 손실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피해의 범위와 정도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 관련 전문조사·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손실액 산출을 위한 용역조사를 하게 한 후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 이상에게 손실액의 평가를 의뢰하되,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보상액을 부담할 수익자가 있으면 수익자에게 용역조사 및 손실액 평가를 의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손실액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 신청이 없는 경우 등 용역조사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용역조사 및 손실액 평가를 함께 의뢰할 수 있다.
- 2) 1)에 따라 용역조사나 손실액 평가를 의뢰받은 자(이하 “조사평가자”라 한다)는 신뢰성 있는 어업경영에 관한 증거자료나 인근 같은 종류의 어업의 생산실적 등을 조사하거나 평가하여 손실액을 계산해야 한다.
- 3) 조사·평가를 의뢰한 행정관청 또는 수익자는 손실액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평가자에게 조사 또는 평가에 관련된 증거자료 및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평가자는 요구한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 4) 조사·평가를 의뢰한 행정관청 또는 수익자는 조사평가자의 조사 또는 평가 결과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조사 또는 평가되었거나 부당하게 조사 또는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면 해당 조사평가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다시 조사 또는 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조사평가자의 조사 또는 평가 결과가 적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조사평가자에게 손실액의 조사 또는 평가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액의 산정은 다시 평가한 손실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 5) 1) 및 4)에 따른 용역조사 및 평가에 드는 경비는 법 제88조에 따라 보상의 책임이 있는 자가 부담해야 한다.
- 6) 해양수산부장관은 1)에 따라 지정한 수산 관련 전문조사·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손실액 산출을 위한 용역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조사를 한 경우
 - 나) 조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부실한 경우
- 7) 해양수산부장관은 1) 또는 6)에 따라 용역조사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8) 1) 및 4)에 따라 손실액 산출에 관한 조사 또는 평가를 의뢰받은 조사평가자나 조사평가를 의뢰한 수익자는 조사 및 평가에 필요한 범위에서 행정관청, 어선의 입항·출항 신고기관,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관련 서류의 열람·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행정관청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 9) 8)에 따라 조사평가자 또는 수익자가 행정관청에 서류의 열람·발급을 의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
 - 가) 의뢰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 나) 열람하거나 발급받으려는 목적
 - 다) 열람하거나 발급받으려는 내용
 - 라) 열람·발급이 필요한 서류 또는 공문서의 종류 및 수량
- 10) 1)부터 7)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용역조사 및 손실액 평가의 의뢰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6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어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어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채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구분 | 업종별 또는 규모별 대상 | | 어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
|---------|----------------|-------------|-------------------------------------|
| 가. 근해어업 |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 | 20만원 |
| |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 | 30만원 |
| | 동해구외끌이저인망어업 | | 13만원 |
| | 근해자망어업 | | |
| |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 | 30만원 |
| |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 | |
| | 대형트롤어업 | | 36만원 |
| | 동해구중형트롤
어업 | 총톤수 40톤 미만 | 27만원 |
| | | 총톤수 40톤 이상 | 36만원 |
| | 대형선망어업 | 총톤수 100톤 미만 | 52만원 |
| | | 총톤수 100톤 이상 | 75만원 |
| | 근해채낚기어업 | | 11만원 |
| | 잠수기어업 | | |
| | 근해안강망어업 | | 21만원 |
| | 근해통발어업 | | 10만원 |
| 근해연승어업 | | | |

| | | | |
|---------------|-------------------|-------------|------|
| | 기선권현망어업
(선단기준) | 총톤수 200톤 미만 | 34만원 |
| | | 총톤수 200톤 이상 | 37만원 |
| | 그 밖의 근해어업 | | 10만원 |
| 나. 연안어업 | 모든 연안어업 | | 6만원 |
| 다. 구획어업 | 모든 구획어업 | | 6만원 |
| 라. 신고어업 | 모든 신고어업 | | 1만원 |
| 마. 어획물운
반업 | 총톤수 70톤 이상 | | 20만원 |
| | 총톤수 50톤 이상 70톤 미만 | | 15만원 |
| | 총톤수 10톤 이상 50톤 미만 | | 10만원 |
| | 총톤수 10톤 미만 | | 5만원 |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2] <개정 2026. 4. 2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채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채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112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단위: 만원)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20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2조 제3항제1호 | 60 | 90 | 120 |
| 나.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을 하거나 어업을 경영한 경우 | 법 제112조 제3항제2호 | | | |
| 1)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을 하거나 어업을 경영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 60 | | |
| 2)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을 하거나 어업을 경영한 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 80 | | |
| 3)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을 하거나 어업을 경영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 100 | | |
| 다. 법 제30조제1항(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그 어업권을 취득하거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어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어업을 시작한 후 1년이 지났으나 계속하여 해당 어장을 휴업 상태로 둔 경우 | 법 제112조 제1항제1호 | 150 | 250 | 500 |
| 라. 어업권자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어장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 법 제112조 제4항제1호 | 30 | 50 | 70 |
| 마. 어업권자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에 따르지 않고 어업권을 특정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한 경우와 그 특정인이 어업권을 행사한 | 법 제112조 제3항제3호 | 60 | 90 | 120 |

| | | | | |
|---|----------------|-----|-----|-----|
| 경우 | | | | |
| 바.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의 변경 등 시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 법 제112조 제3항제4호 | 60 | 90 | 120 |
| 사. 법 제38조에 따른 어업권의 행사의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한 경우와 어업권자가 그 위반행위를 도운 경우 | 법 제112조 제3항제5호 | 60 | 90 | 120 |
| 아. 법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어를 허용하지 않거나 입어의 제한·정지 또는 금지 처분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12조 제3항제6호 | 60 | 90 | 120 |
| 자.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60일로 한다)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90일 이내에 어업허가 어선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 법 제112조 제1항제2호 | 250 | 350 | 500 |
| 차.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어업을 경영한 경우 | 법 제112조 제3항제7호 | 60 | 90 | 120 |
| 카. 신고어업자가 법 제48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2조 제3항제8호 | 60 | 90 | 120 |
| 타. 법 제49조제1항(법 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만, 「어선법」 제17조에 따른 변경등록 사항은 제외한다. | 법 제112조 제3항제9호 | 70 | 100 | 150 |
| 파.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만, 「어선법」 제17조에 따른 변경등록 사항은 제외한다. | 법 제112조 제4항제2호 | 30 | 50 | 70 |
| 하. 법 제49조제3항(법 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2조 제1항제3호 | | | |
| 1) 법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 | | 200 | | |

| | | | | | |
|---|-----------------|-----|-----|-----|--|
| 2) 법 제48조에 따른 어업 신고를 한 경우 | | 150 | | | |
| 거.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5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을 하거나 어업을 경영한 경우 | 법 제112조 제4항제3호 | | | | |
| 1)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을 하거나 어업을 경영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 30 | | | |
| 2)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을 하거나 어업을 경영한 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 40 | | | |
| 3)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을 하거나 어업을 경영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 50 | | | |
| 너.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않고 유어장을 운영한 경우 | 법 제112조 제1항제4호 | 150 | 250 | 500 | |
| 더. 법 제65조제1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2조 제4항제4호 | 50 | 70 | 100 | |
| 러. 법 제66조를 위반하여 어장에 표지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어장 및 어선에 설치한 표지를 이전·손괴·변조 또는 은폐한 경우 | 법 제112조 제4항제5호 | 50 | 70 | 100 | |
| 머.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 법 제112조 제3항제10호 | 70 | 100 | 150 | |
| 버.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측량·검사와 장애물의 이전·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 법 제112조 제3항제11호 | 70 | 100 | 150 | |
| 서. 법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 | 법 제112조 | 100 | 150 | 200 | |

| | | | | |
|--|------------------|-----|-----|-----|
| 지 않고 어구생산업 등을 한 경우 | 제3항제12호 | | | |
| 어. 법 제71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2조 제4항제6호 | 50 | 70 | 100 |
| 저. 법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록의 작성 또는 보존을 하지 않거나 기록을 거짓으로 기재 또는 훼손·제거한 경우 | 법 제112조 제4항제7호 | 50 | 70 | 100 |
| 처.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어구생산업 등을 계속한 경우 | 법 제112조 제3항제13호 | 100 | 150 | 200 |
| 커.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요청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 법 제112조 제4항제8호 | 50 | 70 | 100 |
| 터. 법 제7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어구 관리기록부를 작성·비치·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법 제112조 제4항제8호의2 | 50 | 70 | 100 |
| 퍼. 법 제7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유실 어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2조 제4항제8호의3 | 50 | 70 | 100 |
| 허. 법 제77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면에 설치한 어구의 수거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112조 제4항제9호 | 50 | 70 | 100 |
| 고. 법 제81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구보증금을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2조 제2항제1호 | 100 | 200 | 300 |
| 노. 법 제81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구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어구보증금의 환급문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2조 제2항제2호 | 100 | 200 | 300 |
| 도. 법 제96조제5항에 따른 질문·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 법 제112조 제4항제10호 | 50 | 70 | 100 |

| | | | | |
|--|--------------------|----|----|----|
| 로. 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
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112조
제4항제11호 | 30 | 50 | 70 |
|--|--------------------|----|----|----|

[별지 서식]

어업감독 공무원의 증표(제45조제2항 관련)

(앞쪽)

어업감독 공무원증
(KOREA FISHERY OFFICER)

사 진

3cm × 4cm

(모자를 쓰지 않은 상
반신으로 뒤 그림 얻
이 6개월 이내에 촬영
한 것)

홍길동(한자)
HONG, G. D.

해양수산부
시·도
시·군·구

55mm × 85mm [백상지 150g/m²]

(뒤쪽)

어업감독 공무원증(○○철맥형)

번호:

소속:

직명:

성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임을 증명합니
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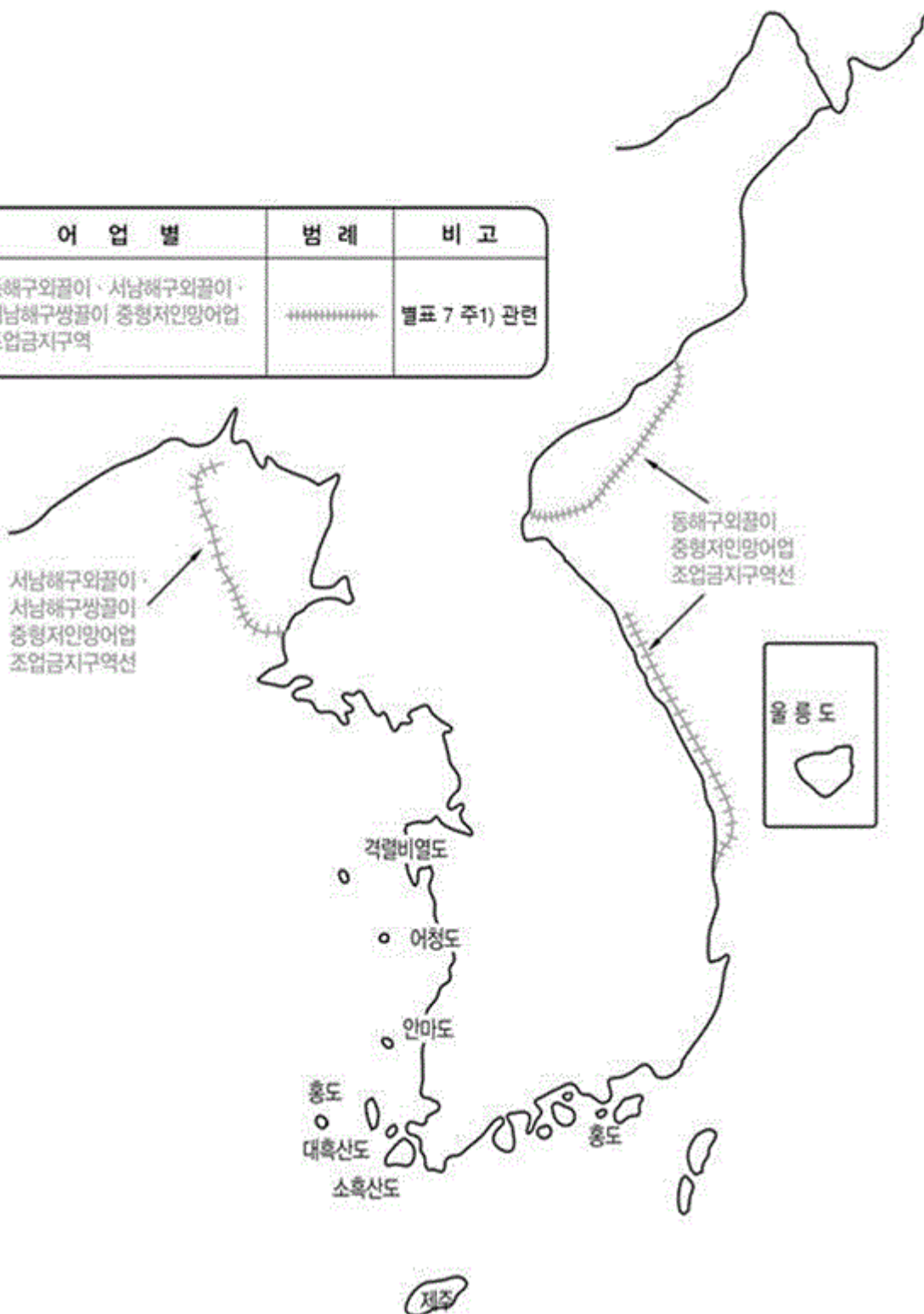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수산업법 시행령 [별도]

어업의 종류별 어구사용의 금지구역(제38조제2항 및 별표 7 관련)

| 어업별 | 범례 | 비고 |
|--|-------|-------------|
| 동해구외꽂이·서남해구외꽂이·
서남해구쌍꽂이 중형저인망어업
조업금지구역 | +++++ | 별표 7 주1) 관련 |





선박안전 조업규칙

[시행 2025. 1. 3.] [해양수산부령 제713호, 2025. 1. 3.,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051 - 773 - 556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총톤수 100톤 미만 선박의 출항 및 입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8. 28.]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정부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선박, 여객선 및 국외에 취항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0. 8. 28.]

제3조 삭제 <2020. 8. 28.>

제4조 삭제 <2020. 8. 28.>

제5조 삭제 <2020. 8. 28.>

제6조 삭제 <2020. 8. 28.>

제7조 삭제 <2020. 8. 28.>

제8조 삭제 <2020. 8. 28.>

제9조 삭제 <2020. 8. 28.>

제10조 삭제 <2020. 8. 28.>

제11조 삭제 <2010. 1. 14.>

제12조 삭제 <2020. 8. 28.>

제13조 삭제 <2020. 8. 28.>

제14조 삭제 <2020. 8. 28.>

제14조의2(선박 출항·입항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의 출항 및 입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선박 출항·입항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8.>

[본조신설 2010. 1. 14.]

제15조(출입항의 신고) ① 선박이 항포구에 출입하려는 경우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출(입)항신고(확인)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선원명부를 출입항하려는 항포구를 관할하는 신고기관(「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신고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해당 확인서를 선박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 1.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2에 따른 선박 출항·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선박 출입항 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입항하는 선박은 제1항에 따라 출입항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

2. 선원명부 또는 선박출(입)항신고(확인)서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③ 신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내용을 제14조의2에 따른 선박 출항·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8. 28.]

제16조 삭제 <2020. 8. 28.>

제17조 삭제 <2020. 8. 28.>

제18조(출항·입항의 제한) ① 신고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항·포구에는 선박이 출항·입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상 악화에 따른 피항, 기관 고장으로 인한 표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삭제 <2020. 8. 28.>

제19조 삭제 <2020. 8. 28.>

제20조 삭제 <2020. 8. 28.>

제21조 삭제 <2020. 8. 28.>

제22조 삭제 <2020. 8. 28.>

제23조 삭제 <2020. 8. 28.>

제24조 삭제 <2010. 1. 14.>

제25조 삭제 <2020. 8. 28.>

제26조 삭제 <2020. 8. 28.>

제27조 삭제 <2020. 8. 28.>

제28조 삭제 <2020. 8. 28.>

제29조 삭제 <2020. 8. 28.>

제30조 삭제 <2020. 8. 28.>

제31조 삭제 <2020. 8. 28.>

부칙 <제392호, 2007. 12. 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박톤수측정기준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을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현존선의 선박톤수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 중 “10톤”을 “15톤”으로 한다. 다만, 개측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낚시어선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입출항신고기관”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출항·입항 신고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II. 개별기준 제2호마목의 제11호 및 제12호의 위반행위란 중 “어업무선국”을 각각 “어업정보통신국”으로 하고, 같은 목의 관련조항란 중 “제13조”를 “제15조”로, “제14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각각 “제17조”로, “제16조”를 “제18조”로, “제17조”를 “제19조”로, “제18조”를 각각 “제20조”로, “제19조”를 각각 “제21조”로, “제21조”를 각각 “제23조”로, “제22조”를 “제24조”로, “제24조”를 “제26조”로, “제25조”를 “제27조”로, “제27조”를 “제29조”로 한다.

③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3조의 규정”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로 한다.

④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의 제2호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어선단을 편성하여”로 한다.

⑤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무선국”을 각각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3조에 따라 어선의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정보통신국”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제5호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무선국”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정보통신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제3호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무선국”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정보통신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제2호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무선국”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정보통신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제2호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⑥ 연근해및원양어업의조업상황등의보고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무선국”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3조에 따라 어업정보통신국”으로 한다.

⑦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3조제1항”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호, 2008. 3. 3.>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2\$ 까지 생략

2% 선박안전조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6조, 제7조제2항제2호, 제9조제4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제1호·제2호, 제21조제3항·제4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4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해운관계공무원(이하 "해운요원"이라 한다)”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해운관계공무원(이하 "해운요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종합정보센터”를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안전조업상황실”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경찰청장 및 국방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해양경찰청장, 국방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 지방해양수산청장 ” 을 “ 지방해양항만청장 ” 으로 한다.

제30조 중 “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해양수산청장 ” 을 “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지방해양항만청장을 포함한다) ” 으로 한다.

2^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111호,2010. 1.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항·입항 신고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출항·입항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5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선박출입항발신장치를 갖추고 출항 전에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항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3조(합동신고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합동신고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신고소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시행규칙 제4조제2호 중 “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제5항 ” 을 “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제6항 ” 으로 한다.

부칙 <제120호,2010. 4. 28.>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선박안전 조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6호 ” 를 “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7호 ” 로 하고, 제15조제4항 중 “ 「수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 ” 을 “ 「수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 으로 한다.

④ 부터 ⑨ 까지 생략

부칙 <제326호,2012. 12. 11.>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13. 3. 24.>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선박안전 조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6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후단, 제21조제3항·제4항 및 제22조제1항·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30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 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10호, 2014. 11. 19.>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선박안전 조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해양경찰함정”을 “국민안전처함정”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속초해양경찰서”를 “속초해양경비안전서”로, “인천해양경찰서”를 “인천해양경비안전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항·제5항 및 같은 조 제8항 전단·후단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제15조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9조제3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경찰기관”을 “경찰기관(해양경비안전관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4조의2 및 제19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5항 중 “해양경찰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⑦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134호, 2015. 1. 8.>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1* 까지 생략

1(선박안전 조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 지방해양항만청장 ” 을 “ 지방해양수산청장 ” 으로 한다.

부칙 <제155호, 2015. 8. 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박안전 조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 「개항질서법」 ” 을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51호, 2017. 7. 28.>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 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3호, 2020. 8. 28.>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박안전 조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총톤수 100톤 미만 선박의 출항 및 입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이하 “ 선박 ” 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정부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선박, 여객선 및 국외에 취항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제3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출입항의 신고) ① 선박이 항포구에 출입하려는 경우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출(입)항신고(확인)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선원명부를 출입항하려는 항포구를 관할하는 신고기관(「어선안전조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신고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해당 확인서를 선박에 갖추어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2에 따른 선박 출항·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선박 출입항 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입항하는 선박은 제1항에 따라 출입항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

2. 선원명부 또는 선박출(입)항신고(확인)서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 ③ 신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내용을 제14조의2에 따른 선박 출항·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9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선박출(입)항신고서”를 “선박출(입)항신고(확인)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수산업법」 제34조 및 「선박안전 조업규칙」”을 “「선박안전 조업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록 1 및 부록 2를 각각 삭제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13호, 2025. 1. 3.>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박안전 조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 선박안전 조업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20. 8. 28.>

■ 선박안전 조업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8. 28.>

| | | |
|----|-----|-----|
| 확인 | 담 당 | 소 장 |
| | | |

선박출(입)항신고(확인)서

(앞쪽)

| 번호 | 선명 | 처리기간 | 즉시 |
|----|----|------|----|
|----|----|------|----|

| | | |
|-----|----|---------|
| 선 장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연락처(전화) |
| 선 주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연락처(전화) |

| | | |
|----------------|----------------|------------|
| 선박제원 및
신고사항 | 선 종 | 톤 수 |
| | 업 종 | 등 록 번 호 |
| | 선 적 지
(船籍地) | 출(입)항일시 |
| | 선 원 수 | 목적지 및 입항일시 |
| | 기 항 지 | 계 선 장 소 |
| | 비 고 | |

적 재 화 물 목 록

| 품 명 | 수 량 | 톤 수 | 송 화 인 | 수 화 인 |
|-----|-----|-----|-------|-------|
| | | | | |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입)항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출항·입항 신고기관의 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없 음 |
|------|----|------------|

처 리 절 차

| | | | | | | | | |
|------------------|---|----------------------|---|-----------------------|---|------------------------|---|-------------------------|
| 출항 신고서 작성
신고인 | → | 접 수
출항·입항
신고기관 | → | 안전유무 확인
출항·입항 신고기관 | → | 출항 승인
출항·입항
신고기관 | → | 신고인 입항 신고
출항·입항 신고기관 |
|------------------|---|----------------------|---|-----------------------|---|------------------------|---|-------------------------|

210mm × 297mm [백상지 80g/m²]

[별지 제3호서식]

선원명부

| 직책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면허 및
수첩 번호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20. 8. 28.>

■ 선박안전 조업규칙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20. 8. 28.>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20. 8. 28.>](#)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20. 8. 28.>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20. 8. 28.>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20. 8. 28.>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2020. 8. 28.>

■ 선박안전 조업규칙 [부도 1] 삭제 <2020. 8. 28.>

■ 선박안전 조업규칙 [부도 2] 삭제 <2020. 8. 28.>

해운항만관련법규

1. 해운법
2. 해운법 시행령
3. 해운법 시행규칙
4. 항만운송사업법
5.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6.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7. 항만법
8. 항만법 시행령
9. 항만법 시행규칙
10. 어촌·어항법
11. 어촌·어항법 시행령
12.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해운법

[시행 2027. 1. 1.] [법률 제21825호, 2026. 6. 16.,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051 - 773 - 5713, 5711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051 - 773 - 57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2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17., 2012. 6. 1., 2015. 1. 6., 2019. 8. 20., 2020. 2. 18., 2023. 7. 25.>

1. “해운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말한다.
- 1의2. “여객선”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2. “해상여객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內陸水路)에서 여객선 또는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수면비행선박(이하 “여객선등”이라 한다)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따르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
3. “해상화물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서 선박[예선(曳船)에 결합된 부선(舁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용대선을 포함한다)를 처리하는 사업(수산업자가 어장에서 자기의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송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
4. “용대선(傭貸船)”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사이 또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외국인 사이에 사람 또는 물건을 운송하기 위하여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선(傭船)하거나 대선(貸船)하는 것을 말한다.
5. “해운중개업”이란 해상화물운송의 중개, 선박의 대여·용대선 또는 매매를 중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6. “해운대리점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외국인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통상(通常)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代理)하는 사업

을 말한다.

7. “선박대여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외의 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임차한 선박을 포함한다)을 다른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에게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선박관리업”이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국내외의 해상운송인,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 관공선 운항자, 조선소, 해상구조물 운영자, 그 밖의 「선원법」상의 선박소유자로부터 기술적·상업적 선박관리, 해상구조물관리 또는 선박시운전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국외의 선박관리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하여 관리활동을 영위하는 업(業)을 말한다.
9. “선박현대화지원사업”이란 정부가 선정한 해운업자가 정부의 재정지원 또는 금융지원을 받아 낡은 선박을 대체하거나 새로이 건조하는 것을 말한다.
10. “화주(貨主)”란 해상화물 운송을 위해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와 화물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1. “안전관리종사자”란 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선장
 - 나. 해원
 - 다. 제22조에 따른 선박운항관리자
 - 라.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
 - 마.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2장 해상여객운송사업

제3조(사업의 종류)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해상이나 해상에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 있는 장소로서 상시(常時) 선박에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2.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일정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3.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4.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5. 순항(巡航) 여객운송사업 :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식음료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여객선을 이용하여 관광을 목적으로 해상을 순회하

여 운항(국내외의 관광지에 기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6.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의 사업과 제5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제4조(사업 면허) ①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에 따른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항로를 포함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으며,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순항 여객운송사업 및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제2호 또는 제4호와 제5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만으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항로와 관계없이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할 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공모를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③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시설 등을 갖추어 줄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하거나 그 밖에 여객에 대한 안전강화 및 편의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2. 6. 1., 2013. 3. 23.>

제4조의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때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였으면 해당 면허를 받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② 삭제 <2023. 5. 16.>

③ 제1항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의제 받으려는 자가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5. 1. 6., 2023. 5. 16.>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에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1. 6., 2023. 5. 16.>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개정 2023. 5. 16.>

⑥ 삭제 <2023. 5. 16.>

[본조신설 2012. 6. 1.]

제4조의3(보험 등에의 가입)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 등의 피해에 대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 6.]

제5조(면허기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6. 1., 2013. 3. 23., 2015. 1. 6., 2026. 6. 16.>

1. 삭제 <2015. 1. 6.>
 2.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과 그 밖의 수송시설이 해당 항로에서의 수송수요의 성격과 해당 항로에 알맞을 것
 3. 해당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해상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4. 해당 사업을 하는데 있어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적합한 운항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
 5. 여객선등의 보유량과 여객선등의 선령 및 운항능력, 자본금 등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알맞을 것
 6. 해당 사업을 할 때 선박의 수리·검사로 인한 결항으로 도서주민의 교통불편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을 것
- ② 삭제 <2015. 1. 6.>

제5조의2(항로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민의 교통권 유지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의 항로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 6.]

제6조(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특례) ①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려면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 계류시설과 그 밖의 수송시설이 해당 항로의 운항에 알맞은지 여부
2.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알맞은지 여부

제7조(국내지사의 설치신고) ①제6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사업에 딸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7. 3. 21.>

④ 제1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딸린 업무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3. 21.>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2. 6. 1., 2014. 3. 18., 2015. 1. 6., 2015. 2. 3., 2016. 3. 29., 2017. 3. 21., 2023. 7. 25.>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2의2. 제19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된 자
3. 이 법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이하 이 조에서 “관계 법률”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가. 「선박법」
 - 나. 「선박안전법」
 - 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라. 「선박직원법」
 - 마. 「선원법」
 - 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 사.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아. 「해상교통안전법」
 - 자. 「해양환경관리법」
4. 관계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9조(제2항제1호의2는 제외한다)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가 취소(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법인

제9조(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제6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여객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고객의 만족도를 평가(이하 “고객만족도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6. 1.,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고객만족도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7. 3. 21.>

1. 고객만족도평가 결과가 우수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포상 또는 우대
 2. 고객만족도평가 결과가 부진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자 공모 또는 재정지원 등에서의 불이익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10. 31.>
 1. 고객만족도평가의 방법
 2. 고객만족도평가의 기준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고객만족도평가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신설 2023. 10. 31.>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만족도평가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3. 21., 2023. 10. 31.>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객만족도평가의 방법·절차, 고객만족도평가 결과 조치,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10. 31.>
- [제목개정 2012. 6. 1.]

제10조(선박의 최소운항기간)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허받은 항로에 투입된 선박을 1년 이상 운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장기휴항 또는 휴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2012. 6. 1., 2013. 3. 23.>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수송기간 등의 시기에 일시적으로 늘리거나 대체 투입한 선박의 수를 줄이는 경우
2. 운항 선박의 검사·수리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대체 투입한 선박의 경우
3. 운항 선박의 파손·노후·고장 등으로 선박의 운항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4. 선박의 성능이나 편의시설 등이 더 양호한 선박으로 대체하는 경우

제11조(운임과 요금) ① 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 이용자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운임 또는 요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6. 1., 2013. 3. 23., 2013. 8. 13.>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7. 3. 21.>
-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7. 3. 21.>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독과점 항로에서 운항하는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과 요금이 제1항에 따라 적절하고 알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요금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13., 2017. 3. 21.>

제11조의2(운송약관 신고) ① 여객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7. 3. 21.>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7. 3. 21.>

④ 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7. 3. 21.>

[본조신설 2012. 6. 1.]

제11조의3(여객선 이력관리 및 안전정보의 공개)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선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선령
2. 선박검사 일자 및 선박검사 결과
3.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고의 이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객운송 안전과 관련된 정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 1. 6.]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①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8. 20.>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7. 3. 21.>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7. 3. 21.>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이나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내항여객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2. 6. 1., 2013. 3. 23., 2015. 1. 6.,

2017. 3. 21.>

1. 선박의 증선·대체 및 감선
2. 기항지의 변경
3. 선박의 운항 횟수나 운항시각의 변경
4. 선박의 휴항

⑤ 제4항에 따른 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면허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3. 21.>

제13조(사업계획에 따른 운항) ① 여객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과 다르게 운항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1. 천재지변
2. 기상악화 또는 항만당국의 긴급 점검으로 인한 일시적인 운항시간 변경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 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고와 동시에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9. 8. 20.>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8. 20.>

제14조(사업개선의 명령)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6. 1., 2013. 3. 23.>

1. 사업계획의 변경
2. 독과점 항로에서의 운임이나 요금의 변경
3. 시설의 개선이나 변경
4. 보험 가입
5. 선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6. 다른 여객운송사업자와 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치
7. 선박의 개량·대체 및 증감에 관한 사항
8.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해운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 제10조에 따른 선박의 최소운항기간의 준수
11. 제11조의2에 따른 운송약관의 변경

제15조(보조항로의 지정과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한다)를 지정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이하 “보조항로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영항로운영기관을 대상으로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제5호 중 여객선등의 보유량과 자본금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6. 6. 16.>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조항로의 운항계획과 운항선박의 관리 등 보조항로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보조항로사업자와 합의하여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합의하여 정한 보조항로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하여 우수 보조항로사업자에 대한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방법·절차와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항로사업자가 제2항의 합의사항을 위반하거나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보조항로사업자가 더 이상 보조항로를 운영하기에 알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항로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의 수리 등으로 인하여 보조항로의 선박 운항이 중단될 것이 우려되면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그 보조항로사업자에게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여객선을 대여받아 운항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조항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항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1. 해당 도서에 연륙교(連陸橋)가 설치된 경우
 2. 수송수요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운항결손액에 대한 보조금 없이 해당 항로의 운항을 할 수 있게 된 경우
 3. 수송수요의 뚜렷한 감소 등으로 인하여 보조항로 지정의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
- ⑦보조항로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보조항로의 지정절차,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 방법, 운항결손액의 결정과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선박건조의 지원) ① 국가는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건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고지원의 대상이 되는 선박 및 건조된 선박의 운항에 관련된 사업자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6. 1.]

제16조(여객선의 운항명령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여객선의 운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1.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항로사업자가 없게 된 경우
2. 운항 여객선 주변 해역에서 재해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3.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도서주민의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하여 그 주변을 운항하는 여객선으로 하여금 해당 도서를 경유하여 운항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항명령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그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항명령을 따름으로 인한 손실과 제2항에 따른 운항명령의 취소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결정과 그 지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2. 6. 1.]

제17조(사업의 승계) ①여객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될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해당 면허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시설과 설비를 전부 인수한 자는 해당 면허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함께 승계한다.<개정 2010. 3. 31., 2016. 12. 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준하는 절차

③제1항에 따른 승계인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여객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그 대표자를 변경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1.>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계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2. 6. 1., 2013. 3. 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7. 3. 21.>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7. 3. 21.>

제18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①여객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6. 1.,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가 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여객선등 이용자의 해상교통 이용에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업을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1.,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와 제1항 단서에 따라 휴업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1., 2013. 3. 23.>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의 휴업기간은 연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6. 1.>

제19조(면허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하거나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11호까지, 제15호 및 제17호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2017. 3. 21., 2019. 8. 20.>

1.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감독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일어난 경우
2. 여객운송사업자가 해양사고를 당한 여객이나 수하물 또는 소하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면허 또는 승인받은 사업의 범위를 벗어나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4. 제4조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거나 그 밖에 면허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미달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한 경우는 제외한다)
6.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운송약관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운송약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7. 여객운송사업자가 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받은 후 인가 실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가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상 운항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운항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4항, 제13조제3항, 제14조,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제4항 및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1.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을 작성·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12. 제21조제2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선등을 운항한 경우
13. 제21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운항관리규정 변경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21조제3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15. 제21조제4항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답변하는 경우
 16. 제21조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출항정지, 시정명령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17. 제22조제2항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지도·감독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18. 제22조제5항 단서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출항정지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면허(승인을 포함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대하여는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2019. 8. 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 1의2. 다중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야기한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감독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일어난 경우
 2. 여객운송사업자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이 제8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7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상속인이 제8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격사유를 해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속한 60일을 초과하여 여객선 운항을 중단하는 상황이 2회 발생하거나 연속한 120일을 초과하여 여객선 운항을 중단하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등의 세부기준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6. 1.]

제20조 삭제 <2012. 6. 1.>

제21조(운항관리규정의 작성·심사 및 준수)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관리규정(運航管理規程)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운항여건의 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2. 6. 1.,

2013. 3. 23., 2015. 1. 6.>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을 제출받은 때에는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운항관리규정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며, 여객선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이유와 변경요지를 명시하여 해당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운항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2. 6. 1., 2013. 3. 23., 2015. 1. 6.>

③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해진 운항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6.>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운항관리규정을 계속적으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6.>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의 안전운항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 출항정지, 시정 명령 등을 할 수 있다.<신설 2015. 1. 6.>

⑥ 제2항에 따른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5. 1. 6.>

[제목개정 2015. 1. 6.]

제21조의2(여객선등의 승선권 발급 및 승선 확인 등) ① 여객선등에 승선하려는 여객은 여객선등의 출항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로부터 여객의 성명 등이 기재된 승선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여객운송사업자는 승선하려는 여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제1항에 따른 승선권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승선권을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받은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④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이 제1항에 따라 승선권을 발급받은 때에는 그 여객의 승선 여부를 확인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여객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승선권 발급내역과 제4항에 따른 여객명부를 3개월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6.]

제21조의3(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은 여객선등의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1. 여객선등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안전관리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2. 조타실(操舵室), 기관실 등 선장이 지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선장 또는 해원의 허락 없이 출입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선등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4. 그 밖에 여객의 안전과 여객선등의 질서유지를 해하는 행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2. 6. 1.]

제21조의4(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의 발급 등) ①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에 선적할 차량과 적재할 화물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 선적과 화물 적재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6.]

제21조의5(안전관리책임자)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운항관리규정의 수립·이행 및 여객선의 안전운항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수립·이행 및 여객선의 안전운항 업무를 「해상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이하 “안전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3. 21., 2023. 7. 25.>

③ 내항여객운송사업자(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업자를 말한다)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선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인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21.>

[본조신설 2015. 1. 6.]

제22조(여객선 안전운항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의 안전운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이하 “운항관리자”라 한다)로부터 안전운항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 6., 2018. 12. 31., 2020. 2. 18.>

③ 운항관리자의 임면 방법과 절차, 직무범위와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④ 운항관리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준수와 이행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직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⑤ 운항관리자는 여객선등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여객선등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또는 선장에게 출항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운항관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1. 6.>

1. 여객선등의 운항 횟수를 늘리는 것

2. 출항의 정지

3.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 변경

4.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운항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요구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직무 등을 감독하는 데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무실 등을 출입하게 하여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운항관리자에게 직무수행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15. 1. 6.>

⑦ 국가는 운항관리자를 돕으로써 들게 되는 비용을 공단에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 4. 22.>

⑧ 삭제<2020. 2. 18.>

[전문개정 2012. 6. 1.]

제22조의2 삭제 <2025. 4. 22.>

제22조의3 삭제 <2025. 4. 22.>

제3장 해상화물운송사업

제23조(사업의 종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내항 화물운송사업 :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
2.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정하여진 항로에 선박을 취항하게 하여 일정한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
3.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 : 제1호와 제2호 외의 해상화물운송사업

제24조(사업의 등록) ①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3. 21.>

②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이나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이하 “외항화물운송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3. 2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붙인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7. 3. 21.>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7. 3. 21.>
-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7. 3. 21.>
- ⑦ 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화물(이하 “대량화물”이라 한다)의 화주(貨主)나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 그 대량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리 국내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관련 업계, 학계, 해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3. 21.>
- ⑧ 제7항에 따른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에 대한 기준,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3. 21.>

제25조(사업등록의 특례) ①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5. 2. 3.>

1.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운송하는 빈 컨테이너나 수출입 컨테이너화물(내국인 사이에 거래되는 컨테이너화물은 제외한다)
 2. 외국항 간에 운송되는 과정에서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중 수상구역으로 동일 수상구역 내의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환적의 목적으로 운송되는 컨테이너 화물(다른 국내항을 경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내항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일시적으로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하려고 하거나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일시적으로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하려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는 것으로 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3. 21.>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7. 3. 21.>
-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7. 3. 21.>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는(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경우에는 선박별 연간 운송기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3. 21.>

⑥ 제2항의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 대상 선박은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 또는 「국제선박등록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신설 2015. 1. 6., 2017. 3. 21.>

제26조(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①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이 그 사업에 딸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따르는 업무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3. 21.>

제27조(등록기준) ①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선박의 보유량과 선령 등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② 외항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선박의 보유량, 자본금 등 사업의 재정적 기초와 경영형태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7조의2(등록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 수행 실적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없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 8. 20.]

제28조(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 ① 외항 정기 화물운송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화주 등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각각 공표하여야 한다. 공표한 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8. 20.>

1.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2.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
3.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제6조에 따른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로서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으로 컨테이너 화물을 정기적으로 운송하는 사업자

4. 그 밖에 운임 및 요금의 공표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임 및 요금의 공표를 유예하거나 신고로 대체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19. 8. 20.>

1. 운임 및 요금의 공표가 외항 정기 화물운송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나 특정 산업 또는 품목의 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2.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

3. 그 밖에 해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9. 8. 20.>

④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계획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운항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8. 20.>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7. 3. 21., 2019. 8. 20.>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7. 3. 21., 2019. 8. 20.>

⑦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표되거나 신고된 내용이 외항 정기 화물운송 시장에서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는 등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정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3. 21., 2019. 8. 20.>

[제목개정 2019. 8. 20.]

제29조(운임 등의 협약) ①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외항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는 다른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외국인 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운임·선박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경우에는 운임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는 제외하며, 이하 “협약”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협약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외항화물운송사업자(국내항과 외국항에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 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가 제1항의 협약을 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7. 3. 21.>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7. 3. 21.>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된 협약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협약의 시행 중지, 내용의 변경이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인 때에는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3. 21.>

1. 제1항 단서 또는 국제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2. 선박의 배치, 화물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 등을 부당하게 정하여 해상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3. 부당하게 운임이나 요금을 인상하거나 운항 횟수를 줄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 ⑥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주단체(貨主團體)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부대비용 등 운송조건에 관하여 서로 정보를 충분히 교환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운임이나 부대비용 등 운송조건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3. 21.>

제29조의2(화물운송의 계약 등) ①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화주는 화물운송거래를 위한 입찰을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화주가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화물운송계약(이하 “장기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1. 운임 및 요금의 우대조건
 2. 최소 운송물량의 보장
 3. 유류비 등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협의
 4. 그 밖에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
- ③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화주가 제2항에 따른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활용하게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운관련 단체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활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8. 20.]

제30조(사업개선 명령)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항로질서를 유지하며 화물을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사업계획의 변경
2. 선원 또는 항로에 위치한 어민 등 해당 선박의 운항에 관련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3.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해운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해상보험 가입

제31조(외항화물운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①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3. 29., 2017. 3. 21., 2019. 8. 20.>

1. 제28조에 따라 공표하거나 신고한 운임 및 요금보다 더 많이 받거나 덜 받는 행위
2. 제28조에 따라 공표하거나 신고한 운임 및 요금보다 덜 받으려고 이미 받은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행위
3. 비상업적인 이유로 특정한 사람이나 지역 또는 운송방법에 관하여 부당하게 우선적 취급을 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 3의2. 운송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4. 비상업적인 이유로 외국수출업자에 비하여 한국수출업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운임 또는 요금을 설정하는 행위
5. 비상업적인 이유로 화물운송과정상 발생한 분쟁, 그 밖의 손해배상청구의 조정·해결에 있어서 화주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인 이유로 화주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②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운송거래를 위해 입찰을 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화주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0.>

1. 제28조에 따라 공표되거나 신고된 운임 및 요금보다 비싸거나 싸게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행위
2. 운송 화물의 품목이나 등급에 관하여 거짓의 운임청구서를 받아 지급한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행위
3.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입찰에 참여하게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운임 및 요금을 인하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입찰에 참가한 다른 사업자의 단가 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5. 운송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인 이유로 해상화물운송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③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외국인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3. 29., 2017. 3. 21.>

1.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2. 제1호에 따른 행위를 이용하여 다른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하는 행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인 이유로 화주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제목개정 2019. 8. 20.]

제31조의2(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8조제1항, 제29조의2제1항·제2항 및 제31조를 위반하거나 화주가 제29조의2제1항·제2항 및 제31조를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이 제28조제1항, 제29조의2제1항·제2항 및 제31조에 해당하고 해상운송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변경이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신고의 내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대신 관계부처에 신고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8. 20.]

제32조(준용규정) ① 해상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 제8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제10호 중 “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4항, 제13조제3항, 제14조,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제4항 및 제50조제1항 ”은 “ 제13조제3항(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 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항,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 제28조, 제29조제2항·제5항, 제30조 및 제50조 ”로, 제19조제1항제11호 중 “ 제21조제1항 ”은 “ 제29조의2제2항 ”으로, 제19조제1항제17호의 “ 제22조제2항 ”은 “ 제31조 ”로 본다. <개정 2012. 6. 1., 2015. 1. 6., 2017. 3. 21., 2019. 8. 20.>

② 삭제 <2012. 6. 1.>

③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4장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

제33조(사업의 등록) ①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이하 “해운중개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해운중개업등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경영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해운중개업등(선박대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하고, 계속하여 해운중개업등을 경영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신설 2012. 6. 1., 2013. 3. 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박관리업의 효율적인 등록·관리 및 선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6. 3. 29.>

제34조(영업보증금의 예치명령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업의 안정적인 선원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영업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34조의2(취업 주선 제한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선박소유자등이 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하여 선원의 취업 주선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8. 17.]

제35조(등록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중개업등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제36조에서 준용되는 제14조(제1호와 제8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34조, 제34조의2 및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8. 20., 2021. 8. 17.>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 사업정지처분의 세부기준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9. 8. 20.>

제36조(준용 규정) 해운중개업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제8조, 제14조(제1호와 제8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6. 1.>

제5장 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

제37조(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 ① 정부는 5년마다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의 수요·공급에 관한 사항

2. 선원의 수요·공급과 복지에 관한 사항
3. 해운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7조의2(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 현대화를 위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6.]

제37조의3(해운산업발전위원회) ①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운산업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심의한다.

1.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안정적 화물 확보 지원에 관한 사항
3. 해운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38조(선박확보 등을 위한 지원) ①정부는 해운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운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게 하거나 융자를 우선할 수 있다.

1. 국내의 항구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의 수입
2. 선박 시설의 개량이나 대체
3. 선박의 보수
4. 선박현대화지원사업에 따른 선박의 건조(建造)

②정부는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업이 낡은 선박을 바꾸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게 하거나 융자를 우선할 수 있다.

제39조(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한 자금조성 등) ①정부는 선박현대화지원사업에 따른 선박의 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하여 해운업자를 선정하려면 그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장기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자
2. 경제선형(經濟船型) 선박을 건조하려는 자

제40조(해운단체의 육성) 정부는 해운업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국제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운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제40조의2(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정적인 해운거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해운시장 관련 정보제공 등을 담당하는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운시황 분석 및 정보 제공
2. 해상운임지수 개발 및 운영
3. 선박의 경제성 분석 등 선박거래에 관한 컨설팅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된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지원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④ 지원기관의 지정요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41조(재정지원) ①정부는 해운단체가 행하는 해운에 관한 공제사업과 공동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하게 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② 정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석유 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에 한정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유류세 보조금”이라 한다)를 보조할 수 있다.<신설 2012. 6. 1., 2014. 1. 1., 2017. 3. 2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1. 4. 13.>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21. 4. 13.>

⑤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절차, 증빙자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2. 6. 1., 2013. 3. 23., 2021. 4. 13.>

[제목개정 2012. 6. 1.]

제41조의2(보조금 등의 사용 등) ① 제38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용자를 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받거나 용자받은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용자금을 받은 해운업자 및 해운단체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을 받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보조금, 용자금 및 유류세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용자금 및 유류세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6. 1.]

제41조의3(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① 제41조제2항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2017. 3. 21., 2017. 10. 31.>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또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석유판매업자등으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유류세 보조금의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이하 “유류구매카드”라 한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실제로 운항한 거리 또는 연료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유류세 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
4. 내항화물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5. 다른 사람 또는 업체가 구입한 연료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6. 실제 주유받은 유종(油種)과는 다른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7. 유류세 보조금의 청구와 관련된 관계 서류에 대한 보완 또는 현장 확인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짓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등록 취소, 해당 선박의 감선 조치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선박의 운항정지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5. 1. 6.>

③ 제2항에 따른 운항정지 처분 등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석유판매업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소에 대한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을 정지하거나 해당 사업소에서 발급한 거래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41조제5항에 따른 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7. 3. 21., 2021. 4. 13.>

[본조신설 2012. 6. 1.]

제42조(선박담보의 특례) 해운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제38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선박을 수입[용선(傭船)을 포함한다]하거나 건조하는 자에게는 해당 선박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해당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선박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제42조의2(압류선박의 운항에 대한 특례) 압류선박이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항로에서 유일한 여객선인 경우에는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176조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및 매수인의 동의 없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선박의 운항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6. 1.]

제43조(손실보상을 위한 조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육지와 도서 간의 연륙교(連陸橋)、연도교(連島橋) 건설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손실을 입은 때에는 해당 내항 여객운송사업자가 제4조에 따른 면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4조(여객선 이용자 등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의 도서민이 사용할 목적의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의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8. 12. 11.>

[제목개정 2018. 12. 11.]

제44조의2(여객선등의 접안시설 축조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선등의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여객선등의 기항지의 접안시설을 축조하거나 여객선 항로에 대한 준설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6. 1.]

제45조(국제협약 등의 이행을 위한 조치)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 사이의 운송비율을 정하는 국제협약이나 운송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제항로별로 선박의 취항을 조정하거나, 해운업자 사이의 운송비율을 결정하거나 그 밖에 이에 관한 협의기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6조(대항조치 등) ①정부는 해운업자가 해상운송과 관련한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호혜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국가의 선박운항사업자나 그 선박운항사업자의 선박 또는 그 선박운항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나 그 국내 선박운항사업자의 선박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1. 부담금 등 금전 부과
2. 선박의 입항금지 또는 입항제한
3. 선박의 화물적재나 짐 나르기(揚荷)의 금지 또는 제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정부는 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가 대한민국의 해운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교역항로의 질서를 어지럽게 한다고 인정되면 그 선박운항사업자 또는 그 선박운항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입항규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선박운항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

④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2. 18.>

제47조(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조나 용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자금을 알맞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7조의2(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기업에 화물의 운송을 위탁하는 화주 기업(이하 “선화주(船貨主)기업”이라 한다)의 해상운송 분야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안정적인 해상운송을 통해 상호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기업에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하는 경우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선화주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체결 여부를 심사기준에 반영하여 우대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주체와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선정을 위한 인증의 기준·절차·방법·점검 및 인증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기업”이라 한다)가 제3항 및 제4항의 요건을 유지하는지의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8. 20.]

제47조의3(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의 취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9조의2제2항 또는 제31조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이 법에 따른 과태료 3회 이상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3. 제47조의2제4항의 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47조의2제5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5.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경우

② 인증기업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47조의6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8. 20.]

제47조의4(인증전담기관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전담기관(이하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인증신청의 접수
2. 제47조의2제4항의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심사
3. 제47조의2제5항에 따른 점검의 대행
4. 제47조의7에 따른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업무
5. 그 밖에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인증전담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본조신설 2019. 8. 20.]

제47조의5(인증전담기관의 지정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

[본조신설 2019. 8. 20.]

제47조의6(인증서와 인증마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기업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마크를 제정하여 인증기업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업이 아닌 자는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기업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8. 20.]

제47조의7(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8. 20.]

제6장 보칙

제48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선박만으로 경영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과 해상화물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2. 노나 돛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제48조의2(응급환자 등의 이송에 대한 특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사고, 재해 및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여객을 운송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2018. 12. 31.>

[본조신설 2012. 6. 1.]

제49조(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량(船腹量)을 알맞게 유지하고 해상안전과 항로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한민국 선박을 소유할 수 없는 자와의 선박의 매매[국적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선체(船體)만을 빌린 선박(裸傭船)을 매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용대선을 제한하거나 특정 항로나 특정 구역에 선박을 투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한 조치를 하려면 대상 선박의 크기, 종류, 선박의 나이, 항로 또는 구역 등 제한의 내용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한 내용의 예외를 인정하려는 때에는 그 요건과 절차 등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③제한 내용의 예외를 인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12. 31.>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31.>
-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12. 31.>

제49조의2(포상금 지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6. 1.]

제50조(보고 및 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운업자(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나 제31조제2항에 따른 화주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2019. 8. 20.>

1.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삭제<2015. 1. 6.>
 3. 제4조제4항에 따른 면허조건 등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제9조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제11조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가 신고한 운임과 요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제13조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7. 제29조에 따른 운임 등의 협약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 7의2. 제31조의2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사항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8. 제34조에 따른 영업보증금의 예치나 보증보험 가입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9. 제35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10. 해운정책의 수립과 해운 관련 통계작성 등을 위하여 해운업자의 사업실적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운업자(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제31조제2항에 따른 화주의 선박,

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8. 20.>

1. 제14조와 제30조에 따른 사업개선의 명령을 하거나 그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의 지정·운영과 제16조에 따른 보조항로 운항명령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9조(제32조 및 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면허(승인을 포함한다) 및 등록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28조에 따른 운임의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제31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외항화물운송사업자 등이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조사로 확인이 안 될 경우에 한하여 계약당사자 모두를 조사할 수 있다.
- 5의2. 제31조의2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사항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7.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와 보고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사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된 경우
- ③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조사하기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사전 통지를 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인하여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1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8. 20.>

1. 제19조나 제32조에 따른 면허의 취소
2. 제27조의2나 제35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3.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인증의 취소
4.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인증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제52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5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운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6. 1., 2013. 3. 23., 2014. 11. 19.>

②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해운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 1. 6.>

제54조(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이 법에 따른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 6. 9., 2020. 1. 29.>

제55조(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업계의 질서유지와 화주의 권익보호 및 안전한 여객·화물 운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운업자(외국인 해운업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을 위반하여 받게 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3. 29., 2017. 3. 21.>

제7장 벌칙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6. 1., 2017. 3. 21., 2019. 8. 20.>

1. 제4조(제4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한 자
2. 제3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해운중개업등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자
4.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 4의2. 제47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기업임을 사칭한 자
5. 제49조에 따른 제한을 위반한 자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6. 1., 2015. 1. 6., 2017. 3. 21., 2020. 2. 18.>

1. 제4조의3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1의2. 제21조제1항·같은 조 제2항 후단·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2항·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14조제8호(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제5항, 제22조제5항·제6항 또는 제30조(제2호 및 제3호에 한정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9조제1항(제32조와 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5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 3의2. 제21조의3제1호를 위반하여 안전관리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운항관리자로 선임하는 데 관여한 자

제5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9. 8. 20.>

1. 제13조제3항(제3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조제1호(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1항, 제28조제7항, 제29조제5항 또는 제30조(제1호·제4호 및 제5호에 한정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1조를 위반한 자
- [본조신설 2015. 1. 6.]

제5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 제57조 또는 제57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6.>

[전문개정 2009. 4. 1.]

제59조(과태료) ① 여객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 1. 6.>

1. 제1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검사 결과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때
2.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승선권 기재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한 때
3.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승선을 거부하지 아니한 때
4. 제2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여객의 승선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여객명부를 관리하지 아니한 때
5. 제2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승선권 발급내역 및 여객명부를 보관하지 아니한 때
6.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 기재내용의 확인 또는 선적·적재 거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발급·선적·적재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3. 21.>

1. 제2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내항여객운송사업자(제21조의5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업자를 말한다)
2. 제21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교육을 이수하게 하지 아니한 내항여객운송사업자(제21조의5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업자를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6. 1., 2015. 1. 6., 2017. 3. 21., 2019. 8. 20., 2020. 2. 18.>

1.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1조의2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8조,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4항 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의2.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여객선 이력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
- 1의3.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승선권을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받고 승선한 여객
- 1의4. 제21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객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
- 1의5.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을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받고 선적·적재한 자
- 1의6.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운송을 한 자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을 공표하지 아니한 자
- 3의2. 제29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 3의3.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 3의4. 제4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한 자
4. 제5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
5.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 ⑤ 삭제<2009. 4. 1.>

제60조 삭제 <2015. 1. 6.>

부칙 <제8381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062호 해운업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88년 12월 3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해산에 관하여 인가를 신청한 것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운임과 요금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546호 해운업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3년 3월 1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 해운항만청장의 인가를 받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과 요금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해상화물운송사업 면허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546호 해운업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3년 3월 1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량화물의 화주가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았거나 사업의 승계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114호 해운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6년 6월 3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외항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제24조제2항

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976호 해운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7월 16일 당시 국내항과 외국항 간에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던 외국인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내지사 설치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내항화물운송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976호 해운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7월 16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8조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976호 해운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7월 16일 당시 종전의 「해운산업육성법」 제3조에 따라 수립·공고된 해운산업육성기본계획은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공고된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으로 본다.

제9조 (정부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976호 해운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7월 16일 당시 종전의 「해운산업육성법」에 따라 행하여진 보조 또는 융자 등의 지원은 제38조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외국에 대한 대항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976호 해운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7월 16일 당시 종전의 「해운산업육성법」 제25조에 따라 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 또는 그 선박에 대하여 한 대항조치는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기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046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중 제3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순항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순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고, 제3조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046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5일 당시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 (사업계획변경신고를 한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8046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신고를 한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 (취항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046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항명령을 받은 여객운송사업자가 운항하는 항로에 대하여는 법률 제8046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5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에 법률 제8046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의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취항명령이 철회된 것으로 본다.

제15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6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 중 “「해운법」 제8조제1항”을 “「해운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②법률 제8221호 선박안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해운법」 제25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을 “「해운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으로 한다.

③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단서 중 “「해운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해운법」 제24조제1항이나 제2항”으로 한다.

제103조제1항 중 “「해운법」 제34조”를 “「해운법」 제33조”로 한다.

④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해운법 제26조”를 “「해운법」 제24조”로 한다.

⑤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 중 “「해운법」 제26조제2항”을 “「해운법」 제24조제2항”으로, “동법 제26조의3”을 “같은 법 제26조”로 한다.

제1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운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 、 <생략> 、 、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93> 까지 생략

<694>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전단,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

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2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제26조제1항 전단, 제28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29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전단,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3조제1항, 제45조, 제47조, 제4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 제55조, 제5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0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및 제6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호, 제1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2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제29조제2항 전단 및 제4항 전단, 제3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34조제2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9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615호, 2009. 4. 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73호, 2009. 6. 9.> (항만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 까지 생략

2&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중 “「항만법」 제77조”를 “「항만법」 제89조”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 <제10219호, 2010. 3. 31.> (지방세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 중 “ 「지방세법」 ”을 “ 「지방세기본법」 ”으로 한다.

<61>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1321호, 2012. 2. 17.>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또는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선박관리, 선원관리 및 해상보험 등의 업무를 수탁하여 행하는 사업[외국의 선박관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受託)하여 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 ”을 “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국내외의 해상운송인,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 관공선 운항자, 조선소, 해상구조물 운영자, 그 밖의 「선원법」 상의 선박소유자로부터 기술적·상업적 선박관리, 해상구조물관리 또는 선박시운전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국외의 선박관리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하여 관리활동을 영위하는 업(業)을 ”으로 한다.

부칙 <제11480호, 2012. 6. 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제재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운송약관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여객운송사업자는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운송약관을 정하여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4조 (행정제재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제1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5조 (등록 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운중개업등(선박대여업은 제외한다)을 등록하고 3년이 지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598호, 2012. 12. 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9>까지 생략

<670>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전단,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1조의2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5조제2항·제3항, 제26조제1항 전단, 제2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전단,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1조의2제2항, 제41조의3제2항, 제43조제1항, 제44조의2, 제45조, 제47조, 제4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9조의2제1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제2항 및 법률 제11480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제1호·제5호,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제6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1호,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1조의2제2항, 제12조제1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 전단, 제21조의2제1항, 제21조의3제4호, 제22조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2항·제3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4조제2항, 제41조제3항, 제41조의3제1항제6호,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67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092호, 2013. 8. 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54호, 2014. 1. 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중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으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부칙 <제12492호, 2014. 3.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호의 개정규정(제17조제3항,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844호, 2014. 11. 1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2>까지 생략

<243>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중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한다.

<24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002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 제21조의5, 제59조제1항제1호, 제59조제2항 및 제59조제3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면허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한정면허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2항에 따라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면허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 수행기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에 속하였던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 수행과 관련된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승계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한국해운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4호 중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및 선박”을 “선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③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제1항제1호 중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4조제1항”으로, “면허 또는 한정면허”를 “면허”로 한다.

부칙 <제13186호, 2015. 2.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개항질서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개항질서법」 제3조에 따른 항계로 동일 항계 내”를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중 수상구역으로 동일 수상구역 내”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제14117호, 2016. 3. 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76호, 2016. 12. 27.> (지방세징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2>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748호, 2017.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5제3항·제4항 및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항 여객운송사업 등의 면허신청에 대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와 관련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3항, 제11조제2항·제3항, 제11조의2제2항·제3항, 제12조제2항·제3항, 제17조제5항·제6항, 제25조제3항·제4항, 제26조제2항·제3항, 제28조제3항·제4항 및 제29조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요금·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계 신고,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또는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의 신고,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국내항과 외국항에서 정기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의 운항계획 신고 또는 변경신고, 외항화물운송사업자(국내항과 외국항에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 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의 협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4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

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8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2조제1항 중 “ 제12조제1항·제2항 ” 을 “ 제12조제1항·제4항 ” 으로 한다.

부칙 <제15011호, 2017. 10. 31.> (항만운송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제1항제1호 중 “ 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 ” 을 “ 선박연료공급업 ” 으로 한다.

부칙 <제15919호, 2018. 12. 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60호, 2018. 12. 3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 ” 을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제16166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의 매매 또는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의 예외인정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박의 매매 또는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의 예외인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521호,2019. 8.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59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902호,2020. 1. 29.> (항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중 “「항만법」 제89조”를 “「항만법」 제26조”로 한다.

<55> 및 <56>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7065호,2020. 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1호 중 “제22조제7항”을 “제22조의2”로 한다.

부칙 <제18067호,2021. 4. 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30호,2021. 8. 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15호,2023. 5. 16.>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 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부칙 <제19573호,2023. 7. 25.> (해상교통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1& 까지 생략

1*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라목 중 “「해사안전법」 제58조제2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으로 하고, 제21조의5제2항 전단 중 “「해사안전법」 제51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53조”로 한다.

제8조제3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해상교통안전법」

제11조 생략

부칙 <제19807호,2023. 10. 3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 <제20951호,2025. 4.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2조의2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의 징수, 납부 등에 관하여는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065호,2025. 10. 1.>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 , <생략> , , ,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6>까지 생략

<527>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2항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52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825호, 2026. 6.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2조제2항 본문 중 “보조항로”를 각각 “공영항로”로 한다.

② 한국해운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3호 중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한다.



해운법 시행령

[시행 2026. 9. 1.] [대통령령 제36639호, 2026. 9. 1.,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051 - 773 - 5713, 5711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051 - 733 - 5731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임차한 선박)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임차한 선박”이란 리스에 의하여 도입된 선박, 국적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 그 밖에 장래에 소유권이전이 확실한 선박을 말한다.

제3조(순항여객운송사업) 법 제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총톤수 2천 톤 이상을 말한다.

제3조의2 삭제 <2024. 11. 5.>

제4조(고객만족도평가의 방법 및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법 제6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객만족도평가(이하 “고객만족도평가”라 한다)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조사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11. 30., 2013. 3. 23.>

② 고객만족도평가는 여객운송사업의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현장 모니터링을 통하여 실시하되, 정시 운항실적 등 객관적 통계지표를 일부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30.>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고객만족도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기간, 평가대상 및 평가기준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5조(고객만족도평가에 따른 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객만족도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 공모를 하는 경우 우선권 또는 가산점의 부여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항로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가산점의 부여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고객만족도평가의 결과가 부진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 공모를 하는 경우 감점의 부여

2. 법 제12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와 관련된 사업계획 변경 인가의 거부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항로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감점의 부여
 4. 법 제38조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 감점의 부여
- [전문개정 2017. 9. 19.]

제6조(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해상교통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 2. 29., 2012. 11. 30., 2013. 3. 23., 2017. 9. 19.>

1. 해상교통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해상교통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해상교통 관련 분야의 단체에서 추천한 자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8. 9. 28., 2024. 4. 30.>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8. 9. 2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9. 28.>

[제목개정 2012. 11. 30.]

제7조(고객만족도평가결과의 공표)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고객만족도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11. 30., 2013. 3. 23., 2017. 9. 19., 2024. 4. 30.>

1.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및 그 결과
2. 여객운송사업자 및 여객선별 평가순위

3. 여객운송사업자 및 해당 여객선별 서비스품질의 향상 정도
 4. 그 밖에 해상교통서비스의 증진을 위하여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고객만족도평가의 결과를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8조(사업계획변경의 인가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이나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내항여객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7. 6., 2017. 9. 19.>

1. 법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삭제<2015. 7. 6.>
3. 사업계획변경이 해당 항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수송안정성 확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제9조(보조항로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조항로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보조항로의 지정일
2. 보조항로의 지정사유
3. 보조항로로 지정된 항로(출발지, 도착지 및 기항지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8. 3. 20.]

제10조(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조항로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항로로 지정된 항로를 운항하고 있는 사업자를 해당 항로의 보조항로사업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3. 20.>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경쟁입찰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조항로의 특성 및 수요에 적합한 선박을 확보할 수 있는 자로 한정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3. 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1조(운항결손액의 결정 및 지급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운항결손액은 해당 보조항로사업자가 보조항로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서 수익을 뺀 비용을 말하며, 그 세부적인 항목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운항결손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항로의 운영기간 동안 매분기별로 보조항로사업자에게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도별로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3. 20.>

제11조의2(국고지원대상 선박 등) ①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국고지원의 대상이 되는 선박 선정기준은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선령(船齡)이 15년을 초과하는 선박을 대체하는 경우
2. 선령 15년 이하인 일반여객선을 차도선(車渡船) 또는 취항하고 있는 항로의 특성에 맞는 선박으로 대체하는 경우
3. 기존에 운항되고 있는 선박보다 총톤수 및 최대속력이 각각 10퍼센트 이상 크고 빠른 선박으로 대체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고지원으로 건조된 선박을 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보조항로사업자로 하여금 보조항로에 취항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11. 30.]

제12조(손실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방법)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항명령 및 그 취소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6. 9. 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손실보상금의 금액을 결정한 후 손실보상금지급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운항명령에 따른 운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운항결손액과 운항명령취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합계로 한다. <개정 2026. 9. 1.>

④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6. 9. 1.>

제12조의2(면허취소의 예외 사유) 법 제19조제2항제4호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기상악화로 인해 여객선의 파손·침몰 등이 발생하여 운항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2. 선박 충돌, 화재 등 예견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여객선의 정비를 위해 운항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3.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가 취소될 경우 해당 항로가 단절되어 도서민의 교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2. 18.]

[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동 <2020. 2. 18.>]

제12조의3(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性別)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9. 5. 21., 2024. 1. 16.>

1.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선박운항관리자
3. 「선박안전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선박검사원
4. 그 밖에 여객선의 운항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운항관리규정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해양수산부 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을 제출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6.]

[제1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3은 제12조의4로 이동 <2020. 2. 18.>]

제12조의4(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법 제21조의5제1항 후단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인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9. 19.>

[본조신설 2015. 7. 6.]

[제12조의3에서 이동 <2020. 2. 18.>]

제12조의5 삭제 <2026. 9. 1.>

제13조(대량화물의 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7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화물”이란 발전용 석탄을 말한다. <개정 2017. 9. 19.>

② 법 제24조제8항에서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대량화물의 화주는 수출입화물의 화주로 한정한다.<개정 2010. 6. 28., 2017. 9. 19.>

1. 대량화물의 화주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2. 제1호의 법인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3. 제1호의 법인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와 제2호의 법인이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4. 대량화물의 화주가 임원의 임명과 해임 등으로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 ③ 제2항에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2. 해당 법인의 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및 감사(이하 “임원”이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자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4.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고용계약에 의한 피고용인 및 그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말한다)
- ④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0. 6. 28., 2017. 9. 19.>
-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신설 2010. 6. 28., 2013. 3. 23., 2025. 10. 1.>
 1. 산업통상부 및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부교수 이상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이상의 사람 중에서 무역 및 해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무역 관련 업계 및 해운 관련 업계에서 임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각 2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해운 관련 법률, 회계, 조세 등의 분야에서 제2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⑥ 위원회 위원(제5항제1호의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신설 2010. 6. 28.>
-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신설 2010. 6. 28.>
- ⑧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신설 2010. 6. 28.>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⑨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10. 6. 28.>
- ⑩ 위원이 제8항 또는 제9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신설 2010. 6. 28.>

⑪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10. 6. 28.>

제14조(공표운임 등에 관한 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표되거나 신고된 운임 및 요금,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된 운항계획 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협약에 대하여 법 제28조제7항 또는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변경이나 조정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9. 19., 2020. 2. 1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의 공표를 유예하거나 신고로 대체하도록 하려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신설 2020. 2. 18.>

제14조의2(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보급·활용 단체) 법 제29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운관련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선주협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 2. 18.]

제15조(협의) ① 법 제29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주단체(貨主團體)”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9. 19.>

1. 회원의 연간 수출입액의 총계가 우리나라 총 수출입액의 100분의 25 이상일 것
2. 단체의 구성 목적이 우리나라 수출입 화주의 권익증진일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6항 후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7. 9. 19.>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협의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협의를 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와 차별하는 경우
3. 거짓 자료 또는 부실한 자료를 제공하여 협의의 목적달성을 어렵게 하는 경우
4. 그 밖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실상 협의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제16조 삭제 <2016. 12. 5.>

제16조의2(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 ① 법 제37조의2에 따른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이하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내항여객선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내항여객선 현대화 추진전략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부문별·연차별 사업계획의 추진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내항여객선의 해사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해사안전과 관련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6.]

제16조의3(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7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재정경제부 제1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및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말한다. <개정 2021. 8. 6., 2025. 10. 1., 2025. 12. 30.>

②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이하 “해운산업발전위원회”라 한다)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19. 5. 21.]

제16조의4(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운영) ①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운산업발전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 두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5. 21.]

제17조(보조 또는 융자)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융자의 알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 7. 6., 2018. 3. 20.>

1. 국내의 항구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 선박가격 총액의 100분의 80 이내의 융자
2. 선박시설의 개량 또는 대체 및 선박을 보수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100분의 20 이내의 보조 및 100분의 80 이내의 융자
3. 선박현대화지원사업에 따라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에는 건조 자금 중 국내에서 마련한 자금의 100분의 80 이내의 융자

4. 선박현대화지원사업에 따라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기 위하여 국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마련한 경우 그 자금과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선박현대화지원사업자금과의 금리차이에 따른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보전
5. 내항여객운송사업 및 내항화물운송사업에 필요한 중고 선박을 수입하거나 친환경 선박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국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마련한 경우 그 자금의 대출금리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정하는 금리와의 차이에 따른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보전

제18조(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이유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시행하려는 사업의 내용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③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자금의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분기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9조(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한 자금조성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매년 선박현대화지원사업의 물량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에 드는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9조의2(전문기관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운산업의 지원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해운산업 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3.>

1. 해운산업 지원에 필요한 해운거래 등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할 것

2. 법 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담인력(해운산업 지원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명 이상(설립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법 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전담인력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전담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3. 법 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는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9. 19.]

제20조(해운공제사업 등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의 범위) 법 제41조에 따른 공제사업 및 공동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보조 및 융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공제사업에 필요한 책임준비금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의 보조 및 융자
2. 공동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소요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보조 및 100분의 80 이내의 융자. 다만, 보조금과 융자금의 총액은 공동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소요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1조(해운공제사업 등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① 법 제41조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쓴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해운단체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이유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전년도 손익계산서 및 해당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③ 법 제41조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1조의2(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등의 세부기준) 법 제41조의3제3항에 따른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5. 7. 6., 2018. 3. 20.>

[본조신설 2012. 11. 30.]

[제목개정 2018. 3. 20.]

제21조의3(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의3제4항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또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석유판매업자등”이라 한다)의 사업소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유류세 보조

금의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이하 “유류구매카드”라 한다)의 거래기능을 정지하거나 해당 사업소에서 발급한 거래내역에 관한 자료를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 3. 20., 2018. 4. 30., 2020. 2. 18.>

1. 석유판매업자등이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1회 한 경우: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3년 또는 증빙자료 불인정 3년
2. 석유판매업자등이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5년 또는 증빙자료 불인정 5년. 다만, 본문에 따른 거래기능 정지 또는 증빙자료 불인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거래기능을 영구적으로 정지하거나 증빙자료를 영구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7. 9. 19.]

[종전 제21조의3은 제21조의4로 이동 <2017. 9. 19.>]

제21조의4(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의 기준) ① 법 제

4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운항사업자로 한다.

1. 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최대주주(최대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있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
2. 외국의 여러 선박운항사업자(각 선박운항사업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최대주주로 있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
3. 제1호의 국내 선박운항사업자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최대주주로 있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
4. 제2호의 국내 선박운항사업자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최대주주로 있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

② 제1항 각 호에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는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본조신설 2013. 3. 18.]

[제21조의3에서 이동 <2017. 9. 19.>]

제22조(대항조치) ① 법 제46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운업자의 지사설치나 화물수집 등 영업과 관련된 차별대우
2. 항만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이용과 해당 시설에서의 용역 이용과 관련된 차별대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대항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항조치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그 행위의 시정기한을 해당 국가·법인 또는 단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

우에는 그 국가·법인 또는 단체의 선박운항사업자 및 그의 선박을 이용하는 화주에게 이를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18.,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내용에는 시정기한 내에 대항조치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시정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대항조치를 할 것임을 밝혀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정기한 내에 대항조치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시정되지 아니하면 대항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항조치가 당사국 간의 통상 및 외교상 중대한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3조(입항규제 등) ①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입항규제 등의 조치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
2. 지사설치나 화물수집 등 영업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3. 항만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이용과 해당 시설에서의 용역 이용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입항규제 등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입항규제 등의 조치 내용을 해당 사업자의 선박운항과 관련된 국내 해운업자와 그의 선박을 이용하는 화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입항규제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시정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아니하면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3조의2(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의 주체 및 대상)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6., 2026. 9. 1.>

1. 화주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3.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이나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본조신설 2020. 2. 18.]

[중전 제23조의2는 제23조의6으로 이동 <2020. 2. 18.>]

제23조의3(인증기업에 대한 점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기업”이라 한다)가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건(이하 “인증요건”이라 한다)을 유지하는지를 그 인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의 전일까지를 말한다) 점검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기업이 인증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해 점검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점검 외에 연 1회에 한정하여 수시 점검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18.]

[중전 제23조의3은 제23조의7로 이동 <2020. 2. 18.>]

제23조의4(인증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7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증전담기관(이하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해당 기관의 업무 내용에 해운산업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2. 법 제47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기관의 명칭, 연락처, 대표자 및 소재지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 ③ 법 제47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제도(이하 “인증제도”라 한다) 및 인증기업에 대한 홍보
 2. 인증제도에 관한 연구
 3. 그 밖에 인증제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본조신설 2020. 2. 18.]

제23조의5(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7조의7에 따라 인증기업에 대해 「항만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그 밖에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8.>

[본조신설 2020. 2. 18.]

제23조의6(응급환자 등의 이송에 대한 특례)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48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이하 “최대승선인원”이라 한다)의 범위를 초과하여 여객을 운송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1.>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여객의 보호자 및 그 이송에 필요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여객 1명당 4명 이내로 한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운송할 수 있는 여객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 5. 21.>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선박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이하 “최대승선인원 산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특별수송기간에 임시로 증원할 수 있는 여객정원 이내. 다만, 임시로 증원할 수 있는 여객정원이 산정되어 있지 않은 선박의 경우에는 최대승선인원 산정기준에 따른 여객정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최대승선인원 산정기준에 따른 여객정원의 100분의 100 이내

[본조신설 2017. 9. 19.]

[제23조의2에서 이동 <2020. 2. 18.>]

- 제23조의7(포상금 지급)** ①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신고 또는 고발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49조의2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2. 이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지급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 7. 6.]

[제23조의3에서 이동 <2020. 2. 18.>]

- 제24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① 법 제19조제3항, 법 제32조, 법 제35조 및 법 제36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 11. 30.>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규모, 사업구역의 특수성 및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1. 4. 4., 2013. 3. 23.>

- 제25조(과징금의 납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3. 12. 12.>
- ③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수납한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④ 삭제<2021. 9. 24.>

- 제26조(과징금의 독촉)**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

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7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내항 여객운송사업 및 외항 여객운송사업과 내항 화물운송사업 및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0. 19., 2012. 11. 30., 2013. 3. 23., 2014. 11. 19., 2015. 1. 6., 2015. 7. 6., 2016. 12. 5., 2017. 9. 19., 2018. 9. 28., 2020. 2. 18.>

1. 법 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내항 여객운송사업만 해당한다)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신고 수리와 그 변경신고의 수리
- 2의2.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운송약관의 신고수리와 그 변경신고의 수리
3. 법 제12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한 신고수리 및 인가
- 3의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4.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명령
5. 법 제14조 및 제30조에 따른 사업개선의 명령
6. 법 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의 지정 및 운영,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여객선의 운항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의 취소
7.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 7의2. 법 제17조제5항(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승계 신고의 수리
8. 법 제18조(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수리,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휴업 허가 및 공고
9.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19조(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의 정지, 사업면허·등록의 취소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
- 9의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 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접수
 - 나.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 다.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심사 및 변경 요구
 - 라.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점검
 - 마.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출항정지, 시정명령 등
- 9의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요청 및 보고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 가. 법 제2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출항정지 보고의 접수
 - 나. 법 제2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여객선등의 운항 횟수를 늘리는 요청의 접수
 - 다. 법 제22조제5항제2호에 따른 출항정지 요청의 접수
 - 라. 법 제22조제5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 변경 요청의 접수
 - 마. 법 제22조제5항제4호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운항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요구의 접수

- 9의4.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보고 또는 사무실 등에 대한 출입·점검 등 운항 관리자에 대한 직무 감독 및 직무수행 개선 등 조치 명령
10. 법 제24조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11.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12.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제한조치의 예외 인정에 관한 허가
- 12의2. 법 제49조의2에 따른 신고·고발 내용의 확인 및 포상금의 지급
13.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보고 요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14.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1조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에 관한 청문
15.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관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신설 2012. 11. 30., 2013. 3. 23., 2015. 1. 6., 2019. 5. 21.>
1. 내항 여객운송사업: 여객선의 주된 항로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이 경우 여객선의 주된 항로에 관한 판단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2. 외항 여객운송사업: 선박의 출항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3. 내항 화물운송사업: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내항 화물운송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다만, 제1항제11호의 권한 중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일시적으로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하려는 경우의 신고의 수리는 선박의 출항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4.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8. 2. 29., 2011. 10. 19., 2012. 11. 30., 2013. 3. 23., 2015. 1. 6., 2016. 12. 5., 2017. 9. 19.>
1. 법 제33조 및 법 제35조에 따른 사업의 등록·변경·갱신, 등록의 취소, 사업의 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
 2. 법 제34조에 따른 영업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 가입명령
 - 2의2. 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에 따른 사업개선의 명령
 - 2의3. 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사업승계신고의 수리
 3.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보고요구
 4. 법 제51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에 관한 청문
 5.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④ 삭제<2014. 11. 19.>
- ⑤ 삭제<2013. 3. 23.>

[제목개정 2017. 9. 19.]

제2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1. 법 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사무
2. 법 제33조에 따른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갱신에 관한 사무
3.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유류세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 3. 27.]

제28조(공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에 따라 공표를 하는 경우에는 공표예정일 15일 전까지 공표계획과 공표를 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해운업자가 공표예정일 전일까지 합당한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공표를 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그 밖에 주요사업자 및 화주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9. 19.>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업자가 공표된 내용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하였다고 인정하면 해당 해운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해운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시정완료사실을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8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3. 3.]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 11. 30., 2015. 7. 6.>

[전문개정 2011. 4. 4.]

부칙 <제20398호, 2007. 11.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운대리점업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7414호 해운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2001년 11월 22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국제해운대리점업 또는 국내해운대리점업에 대하여는 이 영에 따른 해운대리점업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6호 중 “「해운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을 “「해운법」 제22조에 따른 ”으로 한다.

②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해운법」 제34조의 규정 ”을 “「해운법」 제33조 ”로 한다.

③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6호 중 “「해운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을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으로 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7제1항제2호 중 “「해운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을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으로 한다.

제104조의8제7항 중 “「해운법」 제4조 또는 제26조 ”를 “「해운법」 제4조 또는 제24조 ”로 한다.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9조제1항제1호 중 “「해운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로,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로 한다.

⑥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법」 제39조에 따른 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한 해운업자 선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은행총재에게 위탁한다. 다만,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한 해운업자의 선정기준의 제정은 제외한다.

부칙 <제20722호, 2008. 2. 29.>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5> 까지 생략

<136>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제3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9조, 제20조제1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제4항 전단,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본문·

제3항, 제26조 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1항, 제2항 전단,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제8조제2호,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137>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1626호, 2009. 7. 7.>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25호, 2010. 6.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29호, 2011. 4. 4.>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용적률 산정에 관한 적용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3233호, 2011. 10.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 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처리한다.

부칙 <제24214호, 2012. 11. 30.>

이 영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10호, 2013. 3. 18.>

이 영은 2013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43호, 2013. 3. 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4>까지 생략

<145>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2항, 제11조의2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6조 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8조의2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3조제5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제8조제2호,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별표 1 제2호바목의 위반행위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 제2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제13조제5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화물운송사업(제5항에 따라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는 권한은 제외한다)”을 “화물운송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146> 생략

부칙 <제25759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7조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해양경찰청장의 행위와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요청,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행위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25840호, 2014. 12. 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985호, 2015. 1. 6.>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 까지 생략

2\$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2% 부터 3)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6388호, 2015. 7.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 별표 1 및 별표 3 제2호나목·다목 및 파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객만족도평가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조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완료되는 고객만족도평가에 따른 불이익 조치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완료된 고객만족도평가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는 제5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등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등의 세부기준의 적용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1의2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5년 전부터 3년 전까지의 기간에 받은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등의 처분은 별표 1의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조(과징금 부과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의 적용은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658호, 2016. 12.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에 관한 제27조제1항 각 호의 권한과 관련한 업무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및 선박대여업에 관한 제27조제3항 각 호의 권한과 관련한 업무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7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751호, 2016. 12. 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960호, 2017. 3. 27.>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8335호, 2017. 9. 19.>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파목부터 버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13호, 2018. 3.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45호, 2018. 4. 30.>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한다.

부칙 <제29200호, 2018. 9.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781호, 2019. 5. 21.>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제2항제3호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33호, 2020. 2.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석유판매업자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한 석유판매업자등이 이 영 시행 이후 다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도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30509호, 2020. 3. 3.>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76호, 2020. 7. 28.> (항만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까지 생략

3)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5 중 “ 「항만법」 제30조제5항 단서 ”를 “ 「항만법」 제42조제1항 단서 ”로 한다.

3!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30956호,2020. 8.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별표 3 제2호타목 및 하목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 제2호타목 및 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제31380호,2021. 1. 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931호,2021. 8. 6.>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1* 까지 생략

1(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 중 “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을 “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으로 한다.

2) 생략

부칙 <제32014호,2021. 9. 24.>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3% 까지 생략

3^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32406호,2022. 2. 8.>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01호,2023. 1. 3.>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자격기준의 수석안전관리책임자의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3천톤 이상인 경우란 제2호 본문 중 “「해사안전법」 제46조제5항”을 “「해사안전법」 제46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자격기준의 수석안전관리책임자의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500톤 이상 3천톤 미만인 경우란 제2호 중 “「해사안전법」 제46조제5항”을 “「해사안전법」 제46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표 자격기준의 선임안전관리책임자의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3천톤 이상인 경우란 제2호 중 “「해사안전법」 제46조제5항”을 “「해사안전법」 제46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33767호,2023. 9.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13호,2023. 12. 12.>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53호,2024. 1. 16.>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제1호 중 “「해사안전법」 제58조제2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의 자격기준의 수석안전관리책임자의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3천톤 이상인 경우란 제2호 본문 중 “「해사안전법」 제46조의2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4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자격기준의 수석안전관리책임자의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500톤 이상 3천톤 미만인 경우란 제2호 중 “「해사안전법」 제46조의2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4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표 자격기준의 선임안전관리책임자의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3천톤 이상인 경우란 제2호 중 “「해사안전법」 제46조의2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34483호, 2024. 4. 30.>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86호, 2024. 11. 5.>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11호, 2025. 10. 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39호, 2025. 12. 23.> (신규·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5947호, 2025. 12. 30.> (재정경제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5>까지 생략

<276>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 중 “ 기획재정부 제2차관 ” 을 “ 재정경제부 제1차관 ” 으로, “ 해양수산부 차관 ” 을 “ 해양수산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 으로 한다.

<277>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6639호,2026. 9.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해운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1. 16.>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제12조의4 관련)

| 구분 | |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3천톤 이상인 경우 |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500톤 이상 3천톤 미만인 경우 |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500톤 미만인 경우 |
|----------|-----------------------|--|--|--|
| 자격
기준 | 수석
안전
관리
책임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1.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선박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선박운항 또는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2. 「해상교통안전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다만,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만을 관리한 경력은 제외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1. 4급 항해사, 4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선박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선박운항 또는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2. 「해상교통안전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3. 법 제21조의5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로 | 5급 항해사, 5급 기관사 또는 5급 운항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선박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선박운항 또는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 법제처 | 30 | |

| | | | | |
|----|--------------|--|---------------------------------------|--|
| | | 사 또는 4급 운항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선박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선박운항 또는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 박운항 또는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 | 2. 「해상교통안전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 | |
| | | 3. 법 제21조의5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 | |
| 인원 | 수석 안전 관리 책임자 | 1명 이상 | | |
| | 선임 안전 관리 책임자 |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여객선이 6척 이하인 경우: 3척당 1명 이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여객선이 7척 이상 12척 이하인 경우: 4척당 1명 이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여객선이 13척 이상인 경우: 5척당 1명 이상 | | |

비고

- 위 표의 경력에는 1년 이상의 승선경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 수석안전관리책임자~~합제처~~선임안전관리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다.

■ 해운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16. 3. 20.>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등의 세부기준(제21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적발된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운항정지와 운항정지 또는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와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은 운항정지명령의 경우 6개월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의 경우 1년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의 기준 |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가. 석유판매업자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법 제41조의3제1항제1호 | 1개월의 운항정지 또는 6개월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 6개월의 운항정지 또는 1년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 해당 선박에 대한 2년간 감선 조치 | 등록취소 |

| | | | | | |
|---|----------------|--------------------------------|--------------------------------|--------------------------------|--------------------------------|
| 나. 석유판매업자등으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유류구매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법 제41조의3제1항제2호 | 1개월의 운항정지 또는 6개월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 6개월의 운항정지 또는 1년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 해당 선박에 대한 2년간 감선 조치 | 등록취소 |
| 다. 실제로 운항한 거리 또는 연료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유류세 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 법 제41조의3제1항제3호 | 1개월의 운항정지 또는 6개월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 6개월의 운항정지 또는 1년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 해당 선박에 대한 2년간 감선 조치 | 등록취소 |
| 라. 내항화물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법 제41조의3제1항제4호 | 1개월의 운항정지 또는 6개월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 6개월의 운항정지 또는 1년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 해당 선박에 대한 2년간 감선 조치 | 등록취소 |
| 마. 다른 사람 또는 업체가 구입한 연료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법 제41조의3제1항제5호 | 1개월의 운항정지 또는 6개월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 6개월의 운항정지 또는 1년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 해당 선박에 대한 2년간 감선 조치 | 등록취소 |
| 바. 실제 주유받은 유종(油種)과는 다른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법 제41조의3제1항제6호 | 1개월의 운항정지 또는 6개월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 6개월의 운항정지 또는 1년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 해당 선박에 대한 2년간 감선 조치 | 등록취소 |
| 사. 유류세 보조금의 청구와 관련된 관계 서류에 대한 보완 또는 현장 확인을 요구받았으나 | 법 제41조의3제1항제7호 | 1개월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 1개월의 운항정지 또는 2개월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 2개월의 운항정지 또는 4개월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 3개월의 운항정지 또는 6개월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

|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 | | 지급정지 | 지급정지 | 지급정지 |
|--|----------------|-------------------|--------------------------------|--------------------------------|--------------------------------|
| 아. 법 제41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짓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41조의3제1항제8호 | 1개월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 1개월의 운항정지 또는 2개월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 2개월의 운항정지 또는 4개월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 3개월의 운항정지 또는 6개월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

■ 해운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2. 8.>

과징금 부과대상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제24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에 대한 업종별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의 횟수(1차 위반, 2차 위반 및 3차 이상 위반으로 구분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종별 과징금의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한다.

- 1) 1차 위반의 경우: 20%
- 2) 2차 위반의 경우: 50%
- 3) 3차 이상 위반의 경우: 100%

나. 가목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징금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징금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백만원)

| 위 반 행 위 | 해당 조항 | 업종별 과징금의 금액 |
|---------|-------|-------------|
| 법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 |

| | | 해상여객운송사업 | | | | | | 해상화물운송사업 | | | 해운
중개
업 | 해운
대리
점업 | 선박
대여
업 | 선박
관리업 |
|---|-----------------------------|----------------|---------------------|----------------|---------------------|----------|----------------|----------|----------------|---------------------|---------------|----------------|---------------|-----------|
| | | 내항
정기
여객 | 내항
부정
기
여객 | 외항
정기
여객 | 외항
부정
기
여객 | 순항
여객 | 복합
해상
여객 | 내항
화물 | 외항
정기
화물 | 외항
부정
기
화물 | | | | |
| 가.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감독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일어난 경우 | 법 제19조제1항 제1호,
법 제32조제1항 | | | | | | | | | | | | | |
| 1) 해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500 | 1,000 | 1,000 | | | | |
| 2) 해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 | 500 | 500 | 500 | 500 | 500 | 500 | 250 | 500 | 500 | | | | |
| 3) 해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명 이상 5명 미만인 경우 |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50 | 100 | 100 | | | | |
| 4) 1)부터 3)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고 | | 25 | 25 | 25 | 25 | 25 | 25 | 10 | 25 | 25 | | | | |
| 나. 여객운송사업자가 해양사고를 당한 여객이나 | 법 제19조제1항 제2호, | 3 | 3 | 5 | 5 | 5 | 5 | 3 | 10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우
카. 법 제12조제4항에 따
른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후 인가 실시일부
터 15일 이내에 인가사
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
우 | 법 제19조제1항
제7호 | 2 | 1 | | | | | | | | | | | | | | | | |
| 타. 법 제13조제1항에 따
른 사업계획상 운항개시
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항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제1항
제8호 | 3 | 2 | 5 | 5 | 5 | 5 | | | | | | | | | | | | |
| 파. 법 제13조제3항을 위
반하여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명령을 따르지 않고
영업한 경우 | 법 제19조제1항
제10호,
법 제32조제1항 | 10 | | 10 | 10 | 10 | 10 | 10 | | 10 | | | | | | | | | |
| 하. 법 제14조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제1항
제10호,
법 제35조 | 3 | 2 | 5 | 5 | 5 | 5 | | | | | 2 | 2 | 2 | 2 | | | | |
| 거. 법 제16조제1항에 따
른 보조항로 운항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
우 | 법 제19조제1항
제10호 | 3 | 2 | 5 | 5 | 5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너.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제1항 제9호, | 2 | 1 | 5 | 3 | 3 | 3 | 2 | 5 | 3 | | | | | | |
| 더.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휴업기간을 초과한 경우 | 법 제19조제1항 제10호 | 3 | 2 | 5 | 3 | 3 | 3 | | | | | | | | | |
| 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을 작성·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 법 제19조제1항 제11호 | 10 | 10 | | | | | | | | | | | | | |
| 머.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심사를 받지 않고 여객선등을 운항한 경우 | 법 제19조제1항 제12호 | 20 | 20 | | | | | | | | | | | | | |
| 버. 법 제21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운항관리규정 변경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 | 법 제19조제1항 제13호 | 10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응하지 않은 경우
서. 법 제21조제3항에 따
른 운항관리규정 준수의
무를 위반한 경우
1) 운항관리규정에서 정
한 최대 정원을 초과하
여 운항한 경우
2) 운항관리규정에서 정
한 화물의 적재한도를
초과하여 운항한 경우
3) 1) 및 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항성 관련
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
은 경우
4) 1)부터 3)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
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어. 법 제21조제4항에 따
른 정기 또는 수시점검
을 거부·방해 또는 기
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를 제출 또는 답변하는
경우 | 법 제19조제1항
제14호 | 20 | 20 | | | | | | | | | | | | | | | | |
| | | 20 | 20 | | | | | | | | | | | | | | | | |
| | | 10 | 10 | | | | | | | | | | | | | | | | |
| | | 1 | 1 | | | | | | | | | | | | | | | | |
| | 법 제19조제1항
제15호 | 5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하지 않은 경우
퍼. 법 제26조제1항을 위
반하여 국내 지사 설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제1항
법 제19조제1항
제10호,
법 제32조제1항 | | | | | | 5 | 3 | | | | | |
| 허. 법 제28조제1항을 위
반하여 운임을 공표 또
는 변경공표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 | 법 제19조제1항
제10호,
법 제32조제1항 | | | | | | 20 | | | | | | |
| 고. 법 제28조제4항을 위
반하여 운항계획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 | 법 제19조제1항
제10호,
법 제32조제1항 | | | | | | 10 | | | | | | |
| 노. 법 제29조제2항을 위
반하여 협약의 내용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제1항
제10호,
법 제32조제1항 | | | | | | 20 | 10 | | | | | |
| 도. 법 제29조제5항에 따
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
은 경우 | 법 제19조제1항
제10호,
법 제32조제1항 | | | | | | 20 | 10 | | | | | |
| 로. 법 제30조에 따른 사
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제1항
제10호,
법 제32조제1항 | | | | | 2 | 10 | 5 | | | | | |

| | | | | | | | | | | | | | | |
|---|--|---|---|---|---|---|---|---|----|---|---|---|---|---|
| 모.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19조제1항
제10호,
법 제32조제1항 | | | | | | | | 10 | | | | | |
| 보. 법 제31조제3항에 따
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 법 제19조제1항
제10호,
법 제32조제1항 | | | | | | | | | 5 | | | | |
| 소. 법 제34조에 따른 영
업보증금의 예치명령 등
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5조 | | | | | | | | | | | | | 3 |
| 오. 법 제34조의2에 따른
선원의 취업 주선 제한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5조 | | | | | | | | | | | | | 3 |
| 조. 법 제50조제1항을 위
반하여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
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19조제1항
제10호,
법 제32조제1항,
법 제35조 | 2 | 2 | 3 | 3 | 3 | 3 | 2 | 5 | 3 | 2 | 2 | 2 | 2 |

■ 해운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0. 8. 1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채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 | |
|--|-----------------|--------------------|----------|-------------|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가. 법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1조의2제1항, 제13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4항 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3항 제1호 | 50 | 70 | 100 |
| 나. 법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여객선 이력을 관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3항 제1호의2 | 40 | 70 | 100 |
| 다. 법 제1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검사 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 법 제59조제1항 제1호 | 250 | 350 | 500 |
| 라. 법 제12조제1항, 제18조 또는 제 | 법 제59조제3항 | 30 | 60 | 100 |

| | | | | | |
|--|-----------------|-----|-----|-----|--|
| 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제1호 | | | | |
| 마. 법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승선권을 발급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받고 승선한 경우 | 법 제59조제3항 제1호의3 | 50 | 70 | 100 | |
| 바. 법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승선권 기재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1항 제2호 | 250 | 350 | 500 | |
| 사. 법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승선을 거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1항 제3호 | 250 | 350 | 500 | |
| 아. 법 제2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여객의 승선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여객명부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1항 제4호 | 250 | 350 | 500 | |
| 자. 법 제2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승선권 발급내역 및 여객명부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1항 제5호 | 250 | 350 | 500 | |
| 차. 법 제21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객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 법 제59조제3항 제1호의4 | 50 | 70 | 100 | |
| 카. 법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을 발급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받고 선적·적제한 경우 | 법 제59조제3항 제1호의5 | 50 | 70 | 100 | |
| 타. 법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 기재내용의 확인 또는 선적·적재 거부를 하지 않거나 발급·선적·적재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1항 제6호 | 250 | 350 | 500 | |
| 파. 법 제2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2항 제1호 | 150 | 200 | 300 | |
| 하. 법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3항 제1호의6 | 30 | 60 | 100 | |
| 거. 법 제21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교육을 이수하게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2항 제2호 | 150 | 200 | 300 | |

| | | | | |
|---|-----------------|----|----|-----|
| 너.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일시적인 운송을 한 경우 | 법 제59조제3항 제2호 | 50 | 70 | 100 |
| 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을 공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3항 제3호 | 50 | 70 | 100 |
| 러. 법 제29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59조제3항 제3호의2 | 50 | 70 | 100 |
| 머.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59조제3항 제3호의3 | 50 | 70 | 100 |
| 버. 제4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마크를 계속 사용한 경우 | 법 제59조제3항 제3호의4 | 50 | 70 | 100 |
| 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 법 제59조제3항 제4호 | 40 | 70 | 100 |
| 어.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59조제3항 제5호 | 50 | 70 | 100 |



해운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13.] [해양수산부령 제807호, 2026. 7. 13.,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051 - 773 - 5713, 5711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051 - 773 - 57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여객선)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17. 9. 22.>

1. 여객 전용 여객선: 여객만을 운송하는 선박
2.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 여객 외에 화물을 함께 운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되는 선박
 - 가. 일반카페리 여객선: 폐위(閉圍)된 차량구역에 차량을 육상교통 등에 이용되는 상태로 적재·운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서 시속 25노트 미만으로 항행하는 여객선
 - 나. 쾌속카페리 여객선: 폐위된 차량구역에 차량을 육상교통 등에 이용되는 상태로 적재·운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서 시속 25노트 이상으로 항행하는 여객선
 - 다. 차도선(車渡船)형 여객선: 차량을 육상교통 등에 이용되는 상태로 적재·운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 차량구역이 폐위되지 아니한 여객선

[본조신설 2015. 7. 7.]

제2조(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외국국적 선박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개정 2008. 3. 14., 2009. 3. 26., 2013. 3. 24., 2015. 1. 8., 2015. 7. 7., 2018. 1. 11., 2020. 2. 21.>

1. 선박국적증서(임시선박국적증서를 포함한다)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
2. 사업계획서
3.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6., 2011. 4. 11., 2013. 3. 24., 2015. 1. 8.>

1.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대한민국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1.>
 1. 항로의 출발지·기항지 및 종착지와 이들 사이의 거리를 표시한 항로도
 2. 사용할 선박의 명세(사용할 선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확보방법 및 확보기한을 기재하고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운항횟수 및 출발·도착 시간(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과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만 해당된다)
 4. 사업에 필요한 시설
 5. 사업개시 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수지
 6. 부대(附帶)사업의 명세(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의제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④ 삭제<2016. 12. 8.>
- ⑤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선박의 건조가 지연되거나 선박계류 시설 등 시설의 확보가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 1. 11.>
- ⑥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5. 1. 8.>

제3조(사업자 공모)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 공모(이하 “사업자공모”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항로 및 면허의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사업자공모에 응한 자가 보유한 선박의 선령 및 재무건전성 등을 평가하고 해상여객운송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사업자공모의 시기, 절차 및 세부적인 평가 기준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5. 7. 7.]

제3조의2(면허조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할 때 여객터미널의 이용, 승선권 발급 등 여객선의 안전과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 3. 24., 2015. 1.

8., 2015. 7. 7.>

[본조신설 2012. 11. 30.]

제3조의3(「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제출서류)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의제받으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해상여객 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2.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제2조제3항제6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4호 또는 제5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4.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인·허가 등을 받는 것으로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5.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본조신설 2018. 1. 11.]

[종전 제3조의3은 제3조의4로 이동 <2018. 1. 11.>]

제3조의4(보험 등에의 가입) ① 법 제4조의3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 12. 31.>

1. 여객, 선원 및 선박의 피해에 대비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험
2.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이하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의 공제
3.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선주상호보험조합의 보험
4. 외국에서 보험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여객, 선원 및 선박의 피해를 보증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자의 보험 또는 공제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 사본을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상 운항개시일(이하 “운항개시일”이라 한다) 전까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1.>

[본조신설 2015. 7. 7.]

[제3조의3에서 이동 <2018. 1. 11.>]

제4조 삭제 <2015. 7. 7.>

제5조(여객선의 보유량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②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선령(船齡)기준은 20년 이하로 한다.<개정 2008. 3. 14., 2009. 1. 13.>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령이 20년을 초과한 여객선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선박을 검사한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고,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여객선[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선박 및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은 제외한다]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선박을 검사한 결과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관리평가기준에 따라 선박을 평가한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09. 1. 13., 2013. 3. 24., 2015. 7. 7.>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객선 안전증서를 받은 여객선(내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 중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은 제외한다)은 선령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1. 13., 2015. 7. 7.>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령은 해당 선박의 진수일부터 기산하되, 진수한 날을 알 수 없으면 진수한 달의 1일을, 진수한 달을 알 수 없으면 진수한 해의 1월 1일을 진수일로 본다.<개정 2009. 1. 13.>
- ⑥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자본금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신설 2015. 7. 7.>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객선의 보유량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20. 2. 21.>

- 제5조의2(항로고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의 항로를 고시하는 경우 항로의 출발지, 기항지 및 종착지와 이들 사이의 거리를 표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도서민(島嶼民)의 교통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새로운 내항여객운송사업 항로의 고시나 기항지를 추가하는 등 제1항에 따른 항로고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내항여객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새로운 내항여객운송사업 항로의 고시나 제1항에 따른 항로고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로고시 또는 항로고시의 변경 필요성을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로고시 또는 항로고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로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 7. 7.]

제6조(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신청 등) ①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대한민국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09. 3. 26., 2011. 4. 11., 2013. 3. 24., 2020. 2. 21.>

1. 자국에서 취득한 해상여객운송사업의 허가증서 사본
2.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외국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하며, 선박국적증서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포함한다)

3. 사업계획서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게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 2. 21.>
[제목개정 2020. 2. 21.]

제7조(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지사의 설치 또는 설치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 운송사업자 국내지사 설치(변경)신고서에 사업계획서 또는 설치변경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국내지사의 보유시설 및 종업원 현황
3. 보유선박 및 국내항 기항 선박의 명세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의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수반되는 업무의 범위는 여객 모집, 운임·요금의 신고 및 입출항신고 등 해상여객운송사업의 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로 한다. <개정 2017. 9. 22.>

제8조 삭제 <2017. 9. 22.>

제9조(선박의 최소운항기간) ① 법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장기 휴항 또는 휴업”이란 선박이 1개월 이상 휴항하거나 휴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② 법 제10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수송기간”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립되는 특별교통대책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개정 2008. 3. 14., 2010. 1. 29., 2013. 3. 24.>

제10조(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과 요금의 신고)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1. 원가계산서 등 운임과 요금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2. 구간제(區間制) 운임과 요금의 경우 그 구간을 표시한 서류
3. 운임과 요금의 신·구대조표(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를 제외한 여객운송사업자(법 제4조 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1. 10. 19., 2013. 3. 24., 2015. 1. 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7. 9. 22.>

1. 운임과 요금의 산출기준 및 원가 계산방법
2. 운항원가의 구성 및 부대비용

제10조의2(운송약관의 신고)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운송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여객운송사업자는 별지 제7호의2 서식의 운송약관(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5. 1. 8.>

1. 운송약관
 2. 운송약관 신·구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로 한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운송약관의 적용범위
 2. 운임·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3. 부가운임에 관한 사항
 4. 운송책임 및 배상에 관한 사항
 5. 면책에 관한 사항
 6. 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7. 화물의 인도·인수·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
 8. 여객 및 차량 승선권의 예매·발권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이용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여객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운송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여객선터미널·영업소 또는 사업소 등에서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하여 이용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항로별·기항지별 운임 및 요금
2. 운임 및 요금의 할인 및 할증 내용
3. 운송약관

[본조신설 2012. 11. 30.]

제10조의3(여객선 이력관리)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객선 이력관리장부를 해당 여객선을 운항하는 동안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선박의 도입 및 매매에 관한 사항
2. 선박 도입 후 운항항로 이력
3.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 결과
4. 해양사고(「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말한다) 이력

5. 선박 개조(「선박안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조를 말한다) 이력

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여객선 이력관리장부를 선박 및 사업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선박을 매매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여객선 이력관리장부를 인계(선박을 매수 또는 양수한 자가 해당 선박을 내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객선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 7. 7.]

제10조의4(안전정보의 공개) ① 법 제11조의3제2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해사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공표되는 해양사고를 말한다. <개정 2024. 2. 5.>

② 법 제11조의3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여객운송 안전과 관련된 정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여객선의 선명, 선종(船種), 여객선의 총톤수, 여객정원, 화물의 적재한도 및 운항속력
2. 법 제21조에 따른 운항관리규정. 다만, 여객운송사업자의 내부정보 또는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하여 일부를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3. 법 제19조제1항제1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 내용

③ 여객운송사업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여객선 안전정보(제1항에 따른 사고의 이력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처분 내용은 최근 3년간의 정보로 한정한다)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반기(半期)마다 이를 갱신해야 한다.<개정 2020. 8. 19.>

④ 여객운송사업자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제3항에 따라 안전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여객 등이 안전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31.>
[본조신설 2015. 7. 7.]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 ① 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서(변경인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5. 1. 8., 2020. 2. 2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20. 2. 21.>

제12조(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 예외 및 신고)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테러, 전염병 또는 항만시설의 장애 발생이나 그 밖에 사업계획과 다른 운항이 불가피하다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고는 사업계획서에 따른 출항시각 10분 전까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팩스로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21.]

제13조(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① 「해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은 해당 보조항로사업의 계약기간 동안에 예상되는 운항결손액을 제시하는 방식에 따른다. <개정 2015. 7. 7.>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한정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③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 운항결손액의 세부 비용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원 등 운항 관련 종사자의 인건비
2. 유류비
3. 선박수리비
4. 감가상각비 또는 용선료(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박을 확보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5. 그 밖의 운항경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보조항로사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절차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4조(손실보상금의 지급청구) 법 제16조제3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에 수입 및 지출 명세서와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제14조의2(사업의 승계 신고)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인은 별지 제9호의2 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

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5. 1. 8.>

1.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경우

가. 양도·양수 계약서 또는 합병 계약서 사본

나. 양도·양수,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의 경우: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2. 11. 30.]

제15조(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와 휴업허가를 신청하려는 여객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휴업(폐업)신고서 또는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휴업 허가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5. 1. 8., 2015. 7. 7.>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와 휴업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5. 1. 8.>

[전문개정 2012. 11. 30.]

제15조의2(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① 법 제21조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운항관리규정에는 해상안전을 위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와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종사자가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서 별표 2의3에서 규정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7. 7.>

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된 내용대로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여객선 정기 점검표에 따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선박시설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8.> [본조신설 2012. 11. 30.]

제15조의3(운항관리규정의 제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여객선 운항관리규정 보고서에 운항관리규정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항개시일 14일 전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항시간, 운항횟수 및 비상연락망의 변경 등 운항관리규정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운항개시일 7일 전까지, 해양사고 등으로 내항 여객운송사업에 선박을 긴급히 대체 투입하려는 경우에는 운항개시일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7.>

1. 선박검사증서

2. 선박국적증서

3. 무선국 허가증

4. 선박의 복원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운항관리규정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삭제 <2015. 7. 7.>

③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운항관리규정을 소속 임직원과 여객이 열람하기 쉽도록 선박, 주된 사업소 및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7.>

[본조신설 2012. 11. 30.]

제15조의4(운항관리규정 변경이 필요한 운항여건 등의 변경)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운항여건의 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박의 대체(代替)
2. 선박의 개조(「선박안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조를 말한다)
3. 항로의 변경
4. 항로상 위해 요소(교량, 방파제 등)의 변경
5.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변경
6. 그 밖의 운항시간, 운항횟수 및 비상연락망 등의 변경

[본조신설 2015. 7. 7.]

[중전 제15조의4는 제15조의7로 이동 <2015. 7. 7.>]

제15조의5(운항관리규정의 심사 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서류심사만으로 운항관리규정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서류심사: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심사
2. 현장심사: 운항관리규정의 이행 가능성 및 실효성을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한 심사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운항관리규정의 심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운항관리규정의 심사 완료를 알리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운항관리규정 심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항관리규정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7.]

[중전 제15조의5는 제15조의8로 이동 <2015. 7. 7.>]

제15조의6(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 등)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수행하는 점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점검
2. 수시 점검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4. 2. 5.>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 7. 7.]

[종전 제15조의6은 제15조의9로 이동 <2015. 7. 7.>]

제15조의7(여객선 등의 승선권·차량선적권·화물운송장의 발급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의 승선권(승선 개찰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여객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연락처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이 승선권을 발급할 때 및 승선할 때에는 여객의 신분증과 승선권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작성한 여객명부를 출항 전에 선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여객 및 화물 검용 여객선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차량 또는 화물 운송의뢰인(이하 “운송의뢰인”이라 한다)의 성명, 차량번호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차량선적권(차량운송전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화물운송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운송의뢰인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계량증명업을 등록한 자가 발급한 계량증명서를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조의2제2호나목에 따른 쾌속카페리 여객선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차도선형 여객선을 이용하는 운송의뢰인은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7. 7.]

[제15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7은 제15조의10으로 이동 <2015. 7. 7.>]

제15조의8(여객의 금지행위) 법 제21조의3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 3. 24., 2015. 7. 7., 2016. 12. 8.>

1. 정원·화물적재능력을 초과하여 승선·적재를 요구하는 행위

2. 도박, 고성방가 및 음란행위 등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

2의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선박운항관리자(이하 “운항관리자”라 한다)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3. 그 밖에 선원 등 종사자의 구명조끼 착용지시 등 안전운항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2. 11. 30.]

[제15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8은 제15조의11로 이동 <2015. 7. 7.>]

제15조의9(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법 제21조의5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업자를 말한다)는 법 제21조의5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여객선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

2. 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육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객선 안전관리 제도 및 법규
2. 연안항해 및 선박운용 지식
3. 여객선의 소방·구명설비 기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9. 22.]

[종전 제15조의9는 제15조의10으로 이동 <2017. 9. 22.>]

제15조의10(운항관리자의 자격) ① 운항관리자는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승선경력이 3년(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5. 7. 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항관리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 7. 7., 2017. 9. 22., 2020. 8. 1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삭제 <2019. 5. 31.>
5.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 또는 「선박직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기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본조신설 2012. 11. 30.]

[제15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10은 제15조의11로 이동 <2017. 9. 22.>]

제15조의11(운항관리자의 임면 등) ① 운항관리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직원으로 하며, 제15조의10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선임하여 배치한다. <개정 2015. 7. 7., 2017. 9. 22., 2019. 5. 31.>

② 삭제 <2019. 5. 31.>

[본조신설 2012. 11. 30.]

[제15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11은 제15조의12로 이동 <2017. 9. 22.>]

제15조의12(운항관리자의 직무)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7. 7., 2016. 12. 8., 2020. 2. 21.>

1. 내항여객운송사업자·안전관리책임자 및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
2. 운항관리규정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과 의견의 제시
3. 선장 등과 출항 전 합동점검의 수행 및 선장이 작성한 점검보고서의 확인
4.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선장의 업무지도
5. 여객선의 입항·출항 보고의 수리

6. 여객선의 승선정원 초과 여부,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부 및 복원성 등 감항성 유지 여부에 대한 확인
7. 출항 전 기상상황을 선장에게 통보하는 것과 현지 기상상황의 확인
8. 승선하여야 할 승무원의 승선 여부 확인
9. 법 제21조의2제5항에 따른 승선권 발급내역과 여객명부의 보관 여부 확인
10. 선장의 선내 비상훈련 실시 여부 확인
11. 구명기구·소화설비·해도(海圖)와 그 밖의 항해용구 완비 여부 확인
12. 입항·출항 보고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역호출(逆呼出)에 의한 보고사항 확인
13. 여객선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승선지도 포함한다) 및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운항관리 규정 이행 상태의 확인

② 운항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여 이를 선장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운항관리센터에 비치해야 한다.<개정 2022. 6. 30.>

1. 항내 사정
2. 부두시설의 상황
3. 해역별 기상조건 및 해상조건
4. 항행경보 등 항로상황
5. 그 밖에 여객선의 동태 등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운항관리자는 여객선이 그 도착예정시간을 넘겨도 입항하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항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사고 유무를 확인·판단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5. 1. 8., 2015. 7. 7., 2017. 7. 28.>

④ 운항관리자는 여객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 등 제1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복사·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16. 12. 8.>

[본조신설 2012. 11. 30.]

[제15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12는 제15조의13으로 이동 <2017. 9. 22.>]

제15조의13(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 ① 법 제22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여객선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운항관리자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항관리자에게 그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사안전감독관 등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운항관리자의 사무실 또는 업무장소 등을 출입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5. 1. 8., 2015. 7. 7., 2015. 12. 3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운항관리비용의 효율적 집행 등을 위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운항관리비용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4., 2015. 7. 7., 2019. 5. 31.>

[본조신설 2012. 11. 30.]

[제15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13은 제15조의14로 이동 <2017. 9. 22.>]

제15조의14(운항관리규정의 준수·이행 상태 확인)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운항관리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운항관리규정의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여객선의 운항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항관리규정의 이행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② 운항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의 이행 상태를 확인한 결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운항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나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1. 8.>

[본조신설 2012. 11. 30.]

[제15조의13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14는 제15조의15로 이동 <2017. 9. 22.>]

제15조의15(운항관리자의 출항정지 등의 요청)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운항관리자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여객선의 출항정지를 요청할 때에는 문서로 하거나 전화·팩스 등 통신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5. 1. 8.>

② 운항관리자는 여객선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또는 선장에게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항관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1. 8.>

[본조신설 2012. 11. 30.]

[제15조의14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15는 제15조의16으로 이동 <2017. 9. 22.>]

제15조의16(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자를 둬으로써 들게 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여객운임의 1천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부담금의 산출근거, 납부기한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③ 법 제22조의2제5항에서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2. 체납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않거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4.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납부책임을 면하게 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0. 8. 19.]

제16조(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별도건조검사가 진행 중인 선박의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최초 운항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09. 3. 26., 2009. 7. 1., 2013. 3. 24., 2015. 1. 8., 2017. 9. 22., 2020. 2. 21., 2022. 6. 30.>

1. 선박국적증서(임시선박국적증서를 포함한다)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외국 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하며,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업계획서(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만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3. 삭제 <2017. 9. 2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9. 3. 26., 2011. 4. 11., 2013. 3. 24., 2015. 1. 8., 2022. 6. 30.>

1.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대한민국 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하며,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항로의 출발지·기항지 및 종착지와 이들 사이의 거리를 표시한 항로도(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만 해당된다)
2. 사용할 선박의 명세
3. 항로별 운항횟수 및 출발·도착 시간(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만 해당된다)
4. 삭제 <2020. 4. 6.>
5. 사업에 필요한 시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 12. 13., 2013. 3. 24., 2015. 1. 8.>

1. 법 제32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별표 3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1. 12. 13., 2013. 3. 24., 2015. 1. 8.>
- ⑥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5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운항선박명세서를 함께 발급해야 한다.<신설 2020. 2. 21.>

제16조의2(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별도건조검사가 진행 중인 선박의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최초 운항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1., 2022. 6. 30.>

1. 선박국적증서(임시선박국적증서를 포함한다)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외국 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하며,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변경사유 및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2. 6. 30.>
 1.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대한민국 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하며,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에 관한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20. 2. 21.>
- [본조신설 2017. 9. 22.]
- [종전 제16조의2는 제16조의3으로 이동 <2017. 9. 22.>]

제16조의3(등록조건)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16. 12. 8., 2017. 9. 22., 2018. 1. 11.>

1. 여객, 선원 및 선박의 피해에 대비하여 제3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것. 다만,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을 운송하지 않는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과 부선(桴船)은 제외하며, 최초 운항 전까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할 수 있다.

2.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유류를 운송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의 체결. 다만, 최초 운항 전까지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3. 예선(曳船) 1척이 동시에 부선 2척 이상을 예인하지 아니할 것
 4. 선박에 운송화물 또는 운송목적 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화물 또는 지정된 운송목적의 범위에서 운송할 것
 5.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안전한 화물운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본조신설 2015. 7. 7.]
- [제16조의2에서 이동 <2017. 9. 22.>]

제17조(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인 운송신고) ① 내항 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구역 외의 구역에서 일시적인 운송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5. 1. 8.>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용할 선박, 운송하려는 화물의 종류 및 수량, 운송할 기간 및 구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 신고 수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5. 1. 8., 2017. 9. 22.>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자가 등록한 사업구역 외의 구역에서 운송할 수 있는 선박별 연간 운송기간은 9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화물의 원활한 운송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화물의 종류 등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제18조(외국인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 및 변경설치신고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1항”은 “법 제26조제1항”으로 본다.

②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의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수반된 업무의 범위는 화물모집, 운항계획의 신고, 운임의 공표 및 입출항 신고 등 해상화물운송사업의 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7. 9. 22.>

제19조(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27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 7. 7.>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령 15년(폐기물운반선의 경우에는 17년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상의 선박을 운항할 수 없다. <신설 2015. 7. 7.>

1. 해당 화물운송행위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선박이 법 제24조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등록되었던 선박인 경우(해외에 매각된 선박을 수입하여 선령이 15년을 초과한 후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등록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선령이 15년을 경과한 시점에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등록되어 있는 선박인 경우
4. 선령이 15년이 되기 전에 법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또는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았던 제1조의2제2호다목에 따른 차도선형 여객선인 경우
5.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가 등록된 수산물운송을 위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일시운송을 신고한 선박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로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20조(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공표는 운임 및 요금의 적용일 15일 전까지 화주 등 이해관계인이 잘 볼 수 있는 곳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 2. 21.>

②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의 공표를 유예하거나 신고로 대체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서를 운임 및 요금의 적용일 2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2. 21.>

③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의 공표를 유예하거나 신고로 대체하려는 자는 운임 및 요금의 적용일 15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계약서(이하 이 조에서 “장기운송계약서”라 한다)를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20. 2. 21.>

④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운항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운항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운항계획(협약)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선박운항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20. 2. 21.>

⑤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과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국내항과 외국항에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 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협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운항계획(협약)신고서(변경신고서)에 협약서(번역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협약 개요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협약서 및 협약 개요서에 협약 당사자 모두의 이름을 적어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20. 2. 21.>

⑥ 외국인사업자는 국내계약대리점에게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공표, 신청서 또는 신고서의 제출, 장기운송계약서의 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 신고서 또는 장기운송계약서에는 대리점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 2. 21.>

⑦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협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2., 2020. 2. 21.>

[제목개정 2020. 2. 21.]

제20조의2(변경이나 조정 등의 명령)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변경이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조치 명령의 내용 및 그 이행 방법
2. 조치 명령의 수용 여부에 대한 통보 기한
3. 조치 명령에 대한 이행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치 명령의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0. 2. 21.]

제21조(준용규정) 해상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중 “별지 제10호서식”은 “별지 제10호의7서식”으로 본다. <개정 2016. 12. 8., 2017. 9. 22.>

[전문개정 2015. 7. 7.]

제22조(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이하 “해운중개업등”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등록(갱신)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09. 7. 1., 2009. 8. 19., 2012. 11. 30., 2013. 3. 24., 2015. 1. 8., 2015. 12. 31., 2016. 12. 8., 2020. 2. 21.>

1.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가.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 나. 공증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사업계획서
 3.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4. 계약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서(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5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사본과 그 번역문(외국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또는 외국 해상화물운송사업자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다만, 해운중개업 및 선박대여업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5.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6.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선박관리업 및 선박대여업의 경우에만 제출하고, 대한민국국적 선박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에 대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30., 2013. 3. 24., 2015. 1. 8., 2016. 12. 8.>

1. 선박국적증서(대한민국국적 선박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1.>
 1. 사업의 개요
 2. 사업개시 후 3년간의 사업추진계획 및 예상수지
 3. 보유시설현황
 4. 계약상대방의 영업현황(해운중개업 및 선박대여업은 제외한다)
-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표 4에 따른 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과 관련된 계약상대방의 공신력에 관하여 관계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1. 12. 13., 2013. 3. 24., 2015. 1. 8., 2016. 12. 8.>
 1. 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별표 4에 따른 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운중개업등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해운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11. 12. 13., 2013. 3. 24., 2015. 1. 8., 2016. 12. 8.>
- ⑥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5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09. 7. 1., 2011. 12. 13., 2012. 11. 30., 2013. 3. 24., 2015. 1. 8., 2016. 12. 8.>
 1. 사업의 종류
 2. 상호 및 주소
 3. 대표자의 성명
 4. 계약상대방의 명칭 및 주소(해운중개업 및 선박대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주된 사무소 외의 국내외 지사 또는 영업소의 숫자·명칭 및 소재지
 6. 외국인투자자 및 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된다)
 7. 등록 유효기간
- ⑦ 해운중개업등의 등록을 한 자는 제6항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1. 12. 13., 2012. 11. 30., 2013. 3. 24., 2015. 1. 8., 2016. 12. 8.>

제22조의2(해운중개업등의 등록 갱신 신청)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해운중개업등(선박대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

의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7호 서식의 등록(갱신)신청서에 등록증원본과 제2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2015. 1. 8., 2016. 12. 8.>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갱신신청은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할 수 있다.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처리에 관하여는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3. 3. 24., 2015. 1. 8., 2016. 12. 8.>
-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운중개업등의 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을 갱신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제1항에 따른 갱신절차를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5. 1. 8., 2016. 12. 8.>

[본조신설 2012. 11. 30.]

제23조(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4조(영업보증금의 예치 등) ① 선원을 관리하는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영업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 명령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제25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2. 2. 27., 2013. 3. 24., 2016. 12. 8.>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원을 관리하는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 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6. 12. 8.>

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다른 법인이 제25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영업상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공증인의 공증이 있는 경우만 해당된다)
2. 해당 사업자 또는 관리 선박의 소유자가 「선원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보험 및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등 영업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보험증권, 예치증서 등 증명서류를 지체 없이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하는 관계 법인 또는 단체에 제출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하며,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을 폐지하기 전까지는 그 보증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영업보증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6. 12. 8.>

제25조(영업보증금 등의 금액) 제24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영업보증금,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보험의 금액 또는 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하는 선원의 수(이하 “관리선원”이라 한다)가 20명 미만인 경우 : 1억원 이상
2. 관리선원이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 2억원 이상
3. 관리선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 3억원 이상

제26조(과징금납부통지서의 서식 등)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통지에 관한 서면은 별지 제20호서식과 같고, 영 제26조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제26조의2(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유류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 서식의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8., 2020. 7. 30.>

1. 유류판매(공급)사업자별 거래내역서
2. 별지 제21호의3 서식의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
3. 세금계산서
4. 운항실적을 증명하는 자료(「항만법」 제26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운항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유류세를 환급받았거나 유류세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② 내항화물운송사업자(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한 경우 해당 외항구간에서 사용한 유류에 대하여 유류세를 환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련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개정 2015. 1. 8., 2021. 6. 30.>

1. 평소에 비하여 유류사용량이 갑자기 급증한 경우
2. 급유한 시간, 횟수, 지역, 금액 등 급유행태가 특이한 경우
3. 등록된 선박의 수에 비하여 유류사용량이 많다고 여겨지는 경우
4. 급유 받은 유류의 양만큼 실제 운항기록이 없다고 의심되는 경우
5. 선박을 휴항 없이 연속하여 운항하는 등 운항실적이 비정상적인 경우
6. 그 밖의 이상거래 징후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2. 11. 30.]

제26조의3(실적보고 등)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지 제21호의4 서식의 보조금 지급실적 보고서 및 제21호의5 서식의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조치현황 보고서를 분기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5. 1. 8.>

[본조신설 2012. 11. 30.]

제26조의4(금지행위) 법 제41조의3제1항제8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외항구간에서 사용한 유류에 대하여 유류세를 환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26조의2제1항제5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유류세 환급분을 포함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 3. 24., 2015. 12. 31.>

[본조신설 2012. 11. 30.]

제26조의5(해상운송비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한 자
3. 그 밖에 해당 도서지역 해상운송의 현실과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상운송비의 지원기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5. 31.]

제26조의6(인증신청 및 심사)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9. 26.>

1.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 및 그 화주가.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나. 최근 3년간의 항로별 해상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을 증명하는 서류
다.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 및 그 화주가.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나. 화물운송계약을 증명하는 서류
다.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26조의7에 따른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법 제47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전담기관(이하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인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인증전담기관은 인증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운·물류·무역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2. 21.]

[종전 제26조의6은 제26조의11로 이동 <2020. 2. 21.>]

제26조의7(인증의 기준)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의 기준은 별표 4의 2와 같다.

[본조신설 2020. 2. 21.]

제26조의8(인증서의 발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6조의6제3항에 따라 인증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해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21.]

제26조의9(인증기업에 대한 점검) ①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제26조의8제1항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 영 제23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 예정일 30일 전까지 해당 기업에 점검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2. 21.]

제26조의10(인증의 표시) ① 제26조의8제1항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업의 표시 또는 해당 기업이 취급하는 포장·용기·홍보물 등에 법 제47조의6제1항에 따른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47조의6제2항에 따른 고시는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2. 21.]

제26조의11(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의 예외인정허가)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에 대한 예외인정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그 신청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49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선박의 매매 또는 용대선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한 예외인정허가의 경우: 20일
2. 특정 항로나 특정 구역에 선박을 투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한 예외인정허가의 경우: 7일

[본조신설 2019. 5. 31.]

[제26조의6에서 이동 <2020. 2. 21.>]

제27조(보고사항)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자료는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20. 2. 21.]

제28조(조사공무원증)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제29조(수수료) ① 법 제52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5. 1. 8.>

제30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 9. 22., 2026. 7. 13.>

1. 삭제 <2020. 4. 6.>
 2. 삭제 <2026. 7. 13.>
 3. 삭제 <2020. 4. 6.>
 4. 삭제 <2026. 7. 13.>
 5. 제19조 및 별표 3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6. 제20조에 따른 운임의 공표 등: 2017년 1월 1일
 7. 삭제 <2020. 4. 6.>
 8. 제25조에 따른 영업보증금 등의 금액: 2017년 1월 1일
- [전문개정 2017. 1. 2.]

부칙 <제413호, 2008. 2. 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해양수산부령 제285호 해운법시행규칙 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5년 1월 1일 당시 화주 또는 대량 수요자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그 운송계약기간(종전의 계약이 그 기간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갱신되는 경우에는 그 갱신된 기간을 포함한다)이 종료될 때까지는 별표 3의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 (영업보증금 예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다른 법인이 영

업상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자와 동종 사업자와 상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영업보증기간,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제24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다목 중 “해운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②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여객선의 통제절차란 가목 중 “「해운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해운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해운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해운법」 제21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4호, 2008. 3. 14.> (정부조직법의 개정 등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호, 2009. 1.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호, 2009. 3. 26.>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호, 2009. 7. 1.>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등에 따른 적용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비고란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8호, 2009. 8. 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운중개업 등 등록신청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선박관리업 또는 선박대여업을 등록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중 일반 화물운송을 위하여 등록한 자의 등록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8호,2010. 1. 2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전단 및 제9조제2항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를 각각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3조제1항제2호”로 한다.

부칙 <제350호,2011. 4. 1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2호,2011. 10.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0호,2011. 12. 13.>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5호,2012. 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신청 등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외항 여객운송사업의 면허신청 또는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리기간에 따른다.

부칙 <제540호,2012. 11.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여객선운항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5조의6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 은 2013년 6월 30일까지는 “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 로 본다.

② 제15조의6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 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호, 2013. 3. 24.>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 제6항, 제3조제3항 전단, 제3조의2, 제4조제4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 제2항, 제15조의9제2항, 제15조의12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1항 、 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0조제1항 、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 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22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 제4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6조의3, 제29조제3항, 제30조, 별표 2 비고 제2호, 별표 3 비고 제1호,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7호서식의 서명란 및 비고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8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17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 중 “ 국토해양부장관 ” 을 각각 “ 해양수산부장관 ”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제9조제1항 、 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4 및 제27조 중 “ 국토해양부령 ” 을 각각 “ 해양수산부령 ” 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3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7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처리기관란, 별지 제19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 국토해양부 ” 를 각각 “ 해양수산부 ” 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를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로 한다.

부칙 <제63호,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호, 2014. 11.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호, 2014. 1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호, 2014. 12. 31.> (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호, 2015. 1. 8.>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 까지 생략

1*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제6항, 제3조의2,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4조,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제2항,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7제2항 후단, 제15조의8제3항, 제15조의9제1항, 제15조의10제2항, 제15조의11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1항·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22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3, 제29조제3항, 별표 2 비고란 제1호,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3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8호 포함내용란 마목,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9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의3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표 3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선박 보유량란 중 “지방 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를 “Regional Maritime Affairs & Fisheries Administration”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4서식 및 별지 제21호의5서식 중 “관할 항만청”을 각각 “관할 해양수산청”으로 한다.

1(생략

부칙 <제150호, 2015. 7.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 제10조의4, 별표 2의3 다목, 라목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항관리규정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중 운항관리규정의 제출기한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 14일 이후에 운항을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여객선 선령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선령기준은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종전의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

제4조(운항관리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사람[「여객선운항관리규칙」(국토해양부령 제540호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포함한다]은 제15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운항관리자로 본다.

부칙 <제178호, 2015.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호, 2016. 12.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호, 2017. 1. 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51호, 2017. 7. 28.>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호, 2017. 9. 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9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로서 2018년 3월 31일까지 제15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 시기를 기산한다.

부칙 <제273호, 2018. 1.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호, 2019. 5. 31.>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10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0호,2020. 2. 21.>

이 규칙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2호,2020. 4. 6.>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0호,2020. 7. 30.> (항만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제4호 중 “ 「항만법」 제89조 ”를 “ 「항만법」 제26조 ”로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4호 중 “ 「항만법」 제89조 ”를 “ 「항만법」 제26조 ”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제426호,2020. 8. 19.>

이 규칙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6호,2021. 6. 3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9호,2022. 1. 20.>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3호,2022.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운업자의 제출·보고 자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제출·보고를 요청하는 자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23호, 2023. 9.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1호, 2024. 2. 5.>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제1항 중 “「해사안전법」 제57조”를 “「해사안전기본법」 제15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652호, 2024. 2. 5.>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6제2항 중 “「해사안전법」 제58조제2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807호, 2026. 7. 13.>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
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1] 삭제 <2015.7.7.>

■ 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5.1.8.>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기준(제5조제1항 관련)

| 사업의 종류 | 여객선 보유량 |
|----------------------|--|
| 내항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 |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100톤 이상일 것
다만, 수면비행선박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총톤수
합계가 30톤 이상 또는 최대승선인원 합계가 30명 이
상이어야 한다. |
| 외항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 | 총톤수 500톤(속도가 30노트 이상의 선박인 경우에는
국제 총톤수 200톤) 이상의 여객선 1척 이상일 것 |
| 순항 여객운송사업 | 총톤수 2천톤 이상의 선박이 1척 이상일 것 |
|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 총톤수 2천톤 이상의 선박이 1척 이상일 것 |

비고

1.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거나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지역적으로 고립된 항로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여객선 보유량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여객선 보유량에 산입되는 선박은 사업자 소유의 선박과 사업자 명의의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裸傭船)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을 말한다.

■ 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신설 2015.7.7.>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자본금 기준(제5조제6항 관련)

| 사업의 종류 | 자본금 |
|--------------------------|--|
| 내항 정기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500톤 미만인 경우: 2억원 이상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500톤 이상 3천톤 미만인 경우: 4억원 이상 여객선 총톤수 합계가 3천톤 이상인 경우: 10억원 이상 |
| 외항 정기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 10억원 이상 |
| 순항
여객운송사업 | 50억원 이상 |
| 복합
해상여객운송
사업 | 50억원 이상 |

비고

여객선 보유량에 산입되는 선박은 사업자 소유의 선박과 사업자 명의의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을 말한다.

■ 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2의3] <개정 2022. 6. 30.>

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 (제15조의2제1항 관련)

| 구 분 | 포함 내용 | 비 고 |
|--------------------------------------|---|-----|
| 1. 해상에서의 안전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 방침 | 가. 선박의 안전운항 및 안전한 작업환경의 제공에 관한 안전관리목표의 수립
나. 가목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침과 이에 대한 육상직원 및 해상종사원의 이행·유지 확인 | |
| 2.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 가. 주된 사업소·영업소 및 선박별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감독체제 및 협조체제
나. 주된 사업소 및 영업소의 관할구역과 안전관리책임의 범위
다.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직무와 권한
라. 안전관리책임자의 근무체제 | |
| 3. 출항이나 운항을 정지하여야 하는 해상 등의 조건에 관한 사항 | 가. 선박별로 풍속·파고 및 가시거리에 따른 출항정지 조건
나. 선박별·운항구간별로 각각 풍속·파고 및 가시거리에 따른 운항정지 조건 | |
| 4. 항해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운항기준을 표시한 지도에 관한 사항 | 가. 기점·종점 및 기항지의 위치와 그 상호간의 거리
나. 항해경로
다. 운항시각 및 항해속력
라. 항로부근에 있는 암초, 수심이 얕은 곳 및 그 밖에 항해에 장애가 있는 지점
마. 선장이 위치보고를 하여야 하는 지점
바. 좁은 수로 또는 선박의 왕래가 잦은 항로 등의 경우 항해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선장이 직접 선박을 조정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구간 및 구간의 좌표 병기
사. 피항지(避航地)
아. 정기적으로 교행(交行)하는 다른 선박의 명칭 및 그 선박과의 교행 시간·교행위치 | |
| 5. 선장이 운항관리센서법제처 | 가. 승선인원 및 여객의 인적 사항이 기재 | |

| | | |
|---|--|---|
| <p>터에 보고하는 여객선의 입항·출항 상황 등에 관한 사항</p> | <p>되어 있는 승선권의 보관 장소</p> <p>나. 승무하여야 하는 승무원의 승선 여부 확인</p> <p>다. 승선정원의 초과 및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부 확인</p> <p>라. 출항항·출항시간 및 목적항</p> <p>마. 출항 또는 운항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와 위치</p> <p>바. 출항 전 운항관리자로부터 통보받은 기상 및 해상상태와 현지항로의 기상 및 해상상태가 현저히 다른 경우 그 기상 및 해상상태</p> <p>사. 항해 중 항로상 예상하지 못한 장애요인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위치</p> <p>아.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은 정보 중 안전 운항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실</p> <p>자. 해당 선박에 해양사고가 발생하거나 항해 중 조난선박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p> <p>차.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위험물의 종류와 그 수량</p> | |
| <p>6. 위험물 등 여객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는 물건의 취급에 관한 사항</p> | | <p>「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
| <p>7. 여객의 승선과 하선, 화물을 싣고 내리는 행위 및 선박의 계류 등에 관한 사항</p> | <p>가. 여객의 승선과 하선 시의 질서유지 및 정원범위 안에서의 여객승선여부의 확인</p> <p>나. 운항관리자가 없는 기항지의 경우 여객의 승선과 하선 시의 질서유지의 방법 및 정원초과 예방대책</p> <p>다. 화물의 적정 선적 여부와 화물의 고정상태의 확인</p> <p>라. 입항 전 계류시설에 배를 대는데 지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운항관리자로부터의 확인</p> <p>마. 선박의 복원성 및 복원성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p> | <p>여객정원, 총 화물 적재톤수, 차량종류별 적재수량을 기재하여야 한다.</p> |

| | | |
|--|--|---|
| | 바. 차량 및 일반화물 적재에 관한 사항
(차량대수, 화물의 적재톤수 등) | |
| 8. 선박과 그 밖의 수송시설의 점검과 정비에 관한 사항 | 가.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여객선 정기 점검표에 따른 월 1회 이상 여객선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의 실시
나.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에 따른 출항 전 점검의 실시방법과 그 절차
다. 선박을 대는 시설 및 여객승하선시설 등 육상시설의 점검
라. 종선의 점검 및 정비
마. 운항관리자 또는 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선박점검 또는 참관 시 지적한 사항의 시정방법과 그 보고 | |
| 9. 해양사고 등 비상사태 발생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 가. 선원 직책별 비상시 임무와 행동 시나리오
나. 해양사고발생 및 의료구호조치 등의 경우 그 비상연락방법
다.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여객운송사업자가 실시하는 인력의 배치
라. 사고현장의 보존
마. 사고의 내용 및 원인 등의 조사
바. 피해보상 | |
| 10. 여객이 지켜야 하는 사항의 전달에 관한 사항 | 가. 비상시 대피도면을 포함한 여객의 행동요령
나. 여객의 승선과 하선 방법
다. 여객의 위험물 등의 취급방법 | |
| 11. 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운항 및 해양사고방지 교육에 관한 사항 | 가. 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운항
나. 해양사고방지 교육의 실시방법·실시시기·실시장소 및 교관요원 확보방법 등 | |
| 12. 문서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 가. 운항관리규정과 관련된 모든 문서 및 자료의 관리 절차 수립
나.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무효화된 문서 및 자료의 폐기 |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관리하되, 해당 선박과 관련된 모든 문서 및 자료를 선박 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
| 13. 운항관리규정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법제처 | 가. 안전 및 오염방지활동이 운항관리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 |

| | | |
|-----------------------|---|--|
| 확인·검토 및 평가
에 관한 사항 | 운항관리자의 정기적인 이행 상태 확인
전에 내부 심사의 의무적인 시행
나. 문서화된 절차에 따른 내부 심사와 시
정조치의 시행 | |
|-----------------------|---|--|

■ 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6. 12. 8.>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제19조제1항 관련)

| 구분
사업의
종류 | 선박 보유량 | | 자본금 | 경영
형태 |
|-------------------------|--|--------|---|--------------|
| 내항 화물운송사업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호의 평수 구역(平水區域) 또는 해당 지방해양수산청 관할 구역안의 육지와 섬, 섬과 섬 사이 등으로 운항구간의 제한을 받는 내항 화물운송사업 | | 선박이 1척 이상 있을 것 | |
| | 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내항 화물운송사업 | | 보유 선박 중 총톤수 100톤 이상 선박의 총톤수 합계가 500톤 이상일 것. 다만 유조선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총톤수 100톤 이상 유조선을 1척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
| 외항
정기(부정기)
화물운송사업 | 일반 화물운송 | | 총톤수의 합계가 1만톤 이상일 것 | 「상법」상의 회사일 것 |
| | 수산물운송 | 활·선어운송 | 총톤수 20톤 이상의 활·선어운반선이 1척 이상 있을 것 | |
| | | 냉동어운송 | 총톤수 80톤 이상의 냉동운반선이 1척 이상 있을 것 | |

비고

1. 선박 보유량에 산입되는 선박은 사업자 소유의 선박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을 말한다.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중 일반 화물운송을 위하여 등록을 한 자가 각각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을 추가로 경영하려는 경우

자본금 및 경영형태에 관한 기준은 새로 추가하려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지 아니한다.

3.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용역업(같은 호 라목의 행위만 해당한다)을 등록한 자가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선박 보유량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2.11.30>

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제23조 관련)

| 사업의 종류 | 시설 및 경영형태 |
|--------|--|
| 해운중개업 | 「상법」상의 회사일 것 |
| 해운대리점업 | 1. 「상법」상의 회사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
가. 해상여객운송사업자(외국인을 포함한다)와의 대리점 계약
나. 해상화물운송사업자(외국인을 포함한다)와의 대리점 계약
다. 다른 해운대리점업자와의 업무 위탁계약 |
| 선박대여업 | 총톤수 20톤(부선은 100톤) 이상의 선박이 1척 이상 있을 것 |
| 선박관리업 | 1. 「상법」상의 회사일 것
2.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대여업자 등 선박관리를 위탁하려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와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할 것 |

비고

1. 해운대리점업 또는 선박관리업의 경우 계약 체결 시 그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한국해운조합이 그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원 소유의 선박을 수탁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위 선박관리업 등록기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선박관리업을 등록할 수 있다.

■ 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개정 2023. 9. 26.>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의 기준(제26조의7 관련)

1.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및 그 화주

| 인증분야 | | 심사항목 | 세부 심사항목 |
|----------|-----------|---------------------|---|
| 공통
기준 | 리더십 | | 최고 의사결정자의 선화주 상생 의지 |
| | | | 선화주 상생 계획 |
| | 사업
안정성 | |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 |
| | | | 재무 안정성 |
| | 공익성 | | 「해운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제도의
준수 정도 |
| | | | 경제 기여도 |
| | | | 해운산업 기여도 |
| 개별
기준 | 화주 | 동반성장 노력 |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이용률 |
| | | |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이용의 지속성 |
| | | | 그 밖의 동반성장 노력 |
| | | 공정한 운송거래질서
정착 노력 | 표준계약서 이용 실적 |
| | | | 장기계약 체결 비중 |
| | | | 최소약정물량 준수 |
| | 선사 | 상생 서비스 수준 | 서비스품질 |
| | | | 선사의 차별화 서비스 |
| | | 해운 서비스 전략 | 항로 배선 계획 |
| | | | 화주 대응 수준 |
| | | | 해운산업 친환경 정책 참여도 |

2.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 및 그 화주

| 인증분야 | | 심사항목 | 세부 심사항목 |
|------|--|------|---------------------|
| 공통 | | 리더십 | 최고 의사결정자의 선화주 상생 의지 |

| | | | |
|----------|----|---------------------|---|
| 기준 | | | 선화주 상생 계획 |
| | | 사업
안정성 | 장기계약의 안정성 |
| | | | 재무 안정성 |
| | | 공익성 | 「해운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제도의
준수 정도 |
| | | | 경제 기여도 |
| | | | 해운산업 기여도 |
| 개별
기준 | 화주 | 동반성장 노력 | 장기계약 기간 |
| | | | 선박 제공 여부 |
| | | | 그 밖의 동반성장 노력 |
| | | 공정한 운송거래질서
정착 노력 | 장기계약 운임 조건 |
| | | | 장기계약 적합성 |
| | | | 부대 조건 등 계약 공정성 |
| | 선사 | 상생 서비스 수준 | 서비스품질 |
| | | | 선사의 차별화 서비스 |
| | | 해운 서비스 전략 | 선적지/양하지 서비스 수준 |
| | | | 화주 대응 수준 |
| | | | 해운산업 친환경 정책 참여도 |

■ 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2. 6. 30.>

해운업자 또는 화주가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자료(제27조 관련)

| 구분 | 해당 법조
문 | 제출 또는 보고서류 |
|---|------------------|--|
| 1. 법 제14조와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개선의 명령을 하거나 그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 법 제50조
제1항제1호 | 가. 사업계획서
나. 운임 또는 요금의 산출명세서
다.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라. 그 밖에 사업개선의 명령 이행 여부의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
| 2. 법 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의 지정·운영과 법 제16조에 따른 보조항로 운항명령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법 제50조
제1항제1호 | 가. 운항수입 명세서
나. 운항경비지출 명세서 |
| 3. 법 제19조(법 제32조제1항 및 제3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면허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법 제50조
제1항제1호 | 가. 선하증권 및 승선권
나. 운송약관
다. 운항관리규정
라.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
마. 용선계약서
바. 사업승계계약서
사. 그 밖에 법 제19조(법 제32조제1항 및 제3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면허 취소 등의 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
| 4. 법 제28조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공표, 운항계획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 법 제50조
제1항제1호 | 가. 운임 및 요금표(운임 공표를 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나. 운임, 요금 및 비용의 산출명세서
다. 입출항 기록 등 운항계획에 따른 운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 | |
|--|------------------|---|
| 5. 법 제31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외항화물운송사업자 등 또는 화주가 위반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법 제50조 제1항제1호 | 송장, 선하증권, 거래내역서 및 다른 국가에서 운임에 관해 공표하거나 제출한 자료 등 금지행위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
| 6. 법 제9조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평가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법 제50조 제1항제4호 | 가. 승선권
나. 사업계획서 및 운항 관련 서류 |
| 7. 법 제11조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가 신고한 운임과 요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법 제50조 제1항제5호 | 가. 운임과 요금의 산출명세서
나. 실제 운임과 요금을 수취한 자료 등 신고 내용의 이행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 |
| 8. 법 제13조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법 제50조 제1항제6호 | 사업계획서 및 운항 관련 서류 |
| 9. 법 제29조에 따른 운임 등의 협약에 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법 제50조 제1항제7호 | 가. 협약서
나. 운임표 및 운임산출명세서, 선박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 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와 관련된 증빙자료
다. 화주단체와 협의한 내역 |
| 10.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사항에 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법 제50조 제1항 제7호의2 | 가. 운송계약서
나. 장기운송계약서
다. 그 밖에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
| 11. 법 제34조에 따른 영업보증금의 예치나 보증보험 가입에 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법 제50조 제1항제8호 | 가. 영업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나.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다른 법인이 영업상의 채무를 보증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공증포함) |
| 12. 해운정책의 수립과 해운 관련 통계작성 등을 위하여 해운업자의 사업실적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 법 제50조 제1항제10호 | 가. 해상여객 및 화물의 수송실적과 운임수입 현황
나. 해상여객(화물)운송사업 경영에 따른 연도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 밖의 부 |

| | | |
|--|--|---|
| | | 속서류)
다. 등록업체의 사업 실적
라. 분기별 일반현황(연혁, 대표자
이력 등) 및 주요 주주 현황
마. 분기별 소유선박 및 운항선박
현황과 운항노선 현황
바. 분기별 용대선 현황, 용대선의
운항선박명세서
사. 분기별 장기운송 계약 현황
아. 분기별 선박(신조선, 중고선
등)도입 및 매각 현황 |
|--|--|---|

비고

위 표 제12호의 제출 또는 보고서류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6]

수수료(제29조 제1항 관련)

| 구분 | 수수료 금액 |
|----------------------|--------|
| 1. 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 | |
| 가. 내항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 | 1만원 |
| 나. 외항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 | 2만원 |
| 다. 순항 여객운송사업 | 2만원 |
| 라.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 2만원 |
| 2. 화물운송사업 등록신청 | |
| 가. 내항 화물운송사업 | 1만원 |
| 나. 외항 정기(부정기) 화물운송사업 | 2만원 |
| 3. 해운중개업등 등록신청 | 3천원 |

■ 해운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1. 11.>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아래 처리기간란 참조 |
| 신청인 | 상호(명칭) | 주민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
| | 주소
(전화번호:) | |
| | 등록기준지(대표자) | |
| 사업의 종류 | 운항개시일 | |
| 등록의제받으려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합니다) | | |
| 항로구간 | 운항횟수 | |
| 사업의 개요 | 별첨 사업계획서 참조 | |

「해운법」 제4조제1항, 제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외국 국적의 선박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다. 「해운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6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라목 또는 마목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라.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인·허가 등을 받는 것으로 의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마.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내할: 1만원
외할: 2만원
순항: 2만원
복합: 2만원 |
|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 1.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처리기간

1. 내할 여객운송사업: 13일
2. 외할 여객운송사업: 9일
3. 순항 여객운송사업 및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다음 각 목의 기간. 다만, 「해운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15일로 합니다.
 - 가. 국내에서 운항하는 경우: 13일
 - 나. 해외에서 운항하는 경우: 9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 |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신청인 | → | 접수 | → | 검토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과의 협의 | → | 결재 | → | 면허증 작성 | → | 발급 |
| 처리기간: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 | | | | | | | | | |

210mm × 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해운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2. 21.>

| | | | | | | | | |
|--|------------------|--------------|-----|---------|-------|------|------|----|
| 면허번호 | |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 | | | | | | |
| 제 호 | | | | | | | | |
| ① 상호(명칭) | | | | ② 설립연월일 | | | | |
| ③ 성명(대표자) | | | | ④ 생년월일 | | | | |
| ⑤ 소재지 | | | | | | | | |
| 사업
내용
의
표
시 | ⑥ 사업의 종류 | | | | | | | |
| | ⑦ 대상선박 | | 선박명 | 총톤수 | 진수연월일 | 여객정원 | 항해속력 | 기타 |
| | | | | | | | | |
| | 운
항
계
획 | ⑧ 항로 | | | | | | |
| | | ⑨ 출발지 | | ⑩ 종착지 | | | | |
| | | ⑪ 기항지 | | () 개소 | | | | |
| | | ⑫ 운항횟수 | | 회 | | | | |
| ⑬ 영업소명 | | | | | | | | |
| ⑭ 면허조건 | | | | | | | | |
| <p>「해운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 인</p> | | | | | | | | |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 해운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15.7.7.>

항로 개설 신청서

| | | | | | |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7일 | |
| 신청인 | 업체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소재지 | 본사 | | 본사 전화번호 | |
| | | 지사 | | 지사 전화번호 | |
| | 대표자성명 | | | 생년월일 | |
| 신청
개요 | 사업종류 | | | | |
| | 항로 | 출발지 | 종착지 | 총 운항거리
마일 | |
| | | 기항지 | 기항지간 운항거리
마일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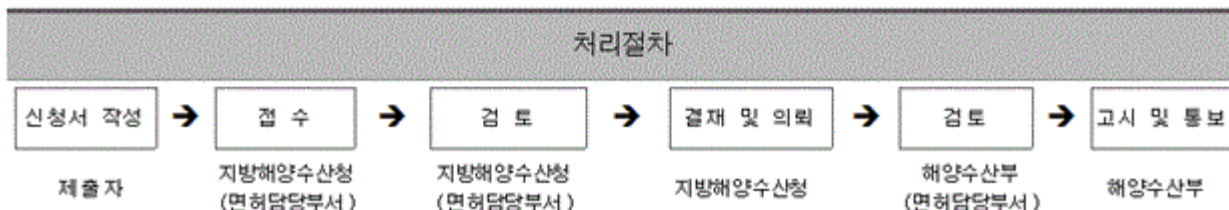
「해운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3.24>

| | | | | |
|---|---|---|-----------|------------|
| 외국인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신청서 | | | | 처리기간
9일 |
| 신청인 | ① 상호(명칭) | | ② 국적 | |
| | ③ 성명(대표자) | | ④ 설립연월일 | |
| | ⑤ 주소 | (전화번호:) | | |
| ⑥ 사업의 종류 | | | ⑦ 운항개시에정일 | |
| ⑧ 항로구간 | | | ⑨ 운항횟수 | |
| ⑩ 사업개요 | | | | |
| 「해운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서명 또는 인) | | | | |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
| 구비서류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수수료 |
| | 1. 자국에서 취득한 해상여객운송사업의 허가증서 사본 1부
2.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사본 각 1부(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외국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업계획서 1부 |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대한민국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제출합니다) | | 2만원 |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

■ 해운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2. 21.>

| | | | | | | | | |
|--|------------------|------------------|-----|---------|-------|------|------|----|
| 승인번호 | | 외국인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증 | | | | | | |
| 제 호 | | | | | | | | |
| ① 상호(명칭) | | | | ② 국적 | | | | |
| ③ 성명(대표자) | | | | ④ 설립연월일 | | | | |
| ⑤ 소재지 | | (전화번호:) | | | | | | |
| 사업
내용
의
표
시 | ⑥ 사업의 종류 | | | | | | | |
| | ⑦ 대상선박 | | 선박명 | 총톤수 | 진수연월일 | 여객정원 | 항해속력 | 기타 |
| | | | | | | | | |
| | 운
항
계
획 | ⑧ 항로 | | | | | | |
| | | ⑨ 출발지 | | ⑩ 종착지 | | | | |
| | | ⑪ 기항지 | | () 개소 | | | | |
| | | ⑫ 운항횟수 | | 회 | | | | |
| | ⑬ 영업소명 | | | | | | | |
| ⑭ 승인 조건 | | | | | | | | |
| <p>「해운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해양수산부장관 </p> | | | | | | | | |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 | | | | | | |
|--|------------|----------|-----------|------|--|------------|
| 외국인 운송사업자 국내지사 설치(변경)신고서 | | | | | | 처리기간
2일 |
| 사업자 | ① 상호(명칭) | | ② 국적 | | | |
| | ③ 주소 | (전화번호:) | | | | |
| | ④ 자본금 | | ⑤ 성명(대표자) | | | |
| 국내지사
설치내용 | ⑥ 상호(명칭) | | | | | |
| | ⑦ 주소 | (전화번호:) | | | | |
| | ⑧ 지사의 대표자 | | | | | |
| | ⑨ 업무의 범위 | | | | | |
| | ⑩ 영업소 | | | | | |
| 변경의
경우 | ⑪ 변경하려는 사항 | 변경 전 | | 변경 후 | | |
| | | | | | | |
| | ⑫ 사유 | | | | | |
| <p>「해운법」 제7조제1항·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 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변경)를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고인(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p> <p>해양수산부장관 귀하</p> | | | | | | |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신고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설치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 | | | 수수료 |
| | | | | | | 없음 |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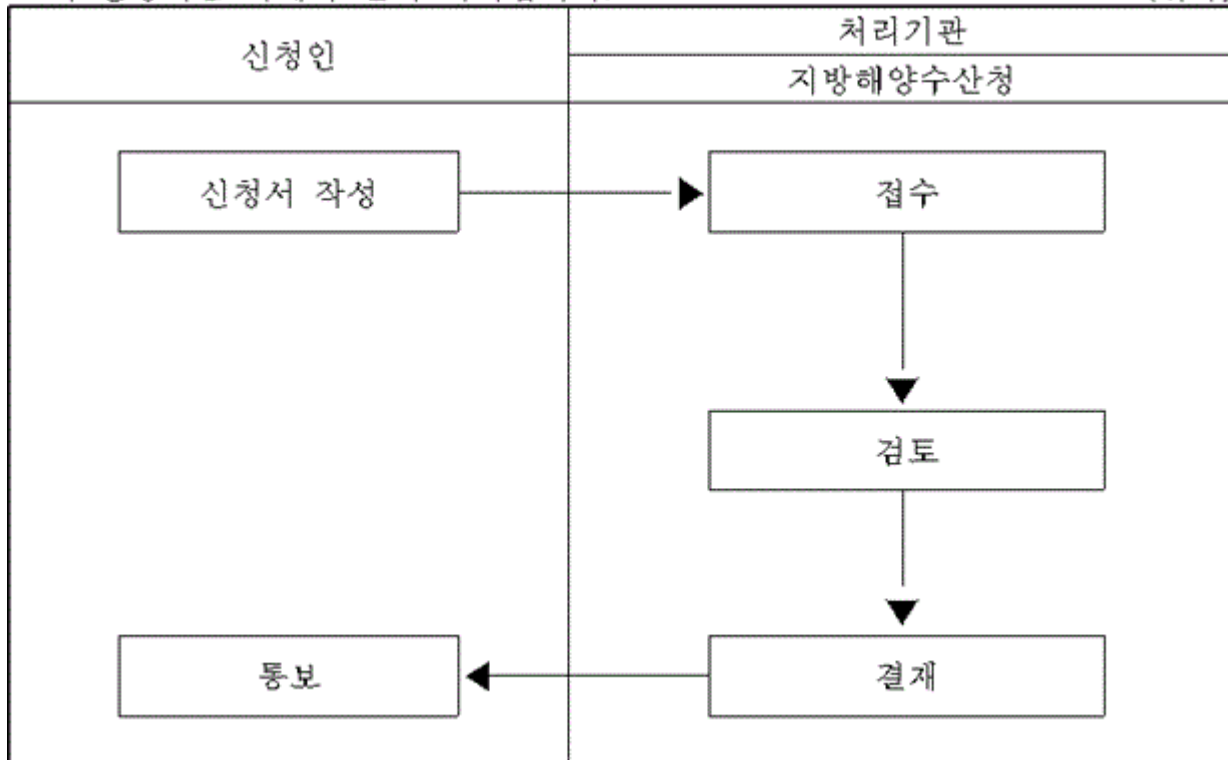
(앞 쪽)

| | | | | |
|--|-----------|--|--------|------|
|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 | |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 처리기간 |
| | | | | 7일 |
| 신
고
인 | ① 상호(명칭) | | | |
| | ② 성명(대표자) | | ③ 생년월일 | |
| | ④ 주소 | | | |
| ⑤ 선박명 | | | | |
| ⑥ 항로 | | | | |
| 운임·
요금 | ⑦ 운항구간 | | | |
| | ⑧ 운임 | | | |
| | ⑨ 요금 | | | |
| ⑩ 변경사유 | | | | |
| <p>「해운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
이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고인 (서명 또는 인)</p> <p>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p> | | | | |
| 구비서류 | | | | 수수료 |
| 1. 원가계산서 등 운임과 요금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1부
2. 구간제 운임과 요금의 경우 그 구간을 표시한 서류 1부
3. 운임과 요금의 신·구대조표(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 | 없음 |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 9. 22.>

**외항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 ·
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운임 · 요금**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 신고인 | 상호(명칭) | | | | |
| | 성명(대표자) | | | 생년월일 | |
| | 주소 | | | | |
| 운임 · 요금 | 운항구간 | | | | |
| | 운임 | | | | |
| | 요금 | | | | |
| 시행일 | | | | | |
| 변경사유 | | | | | |

「해운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항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 · 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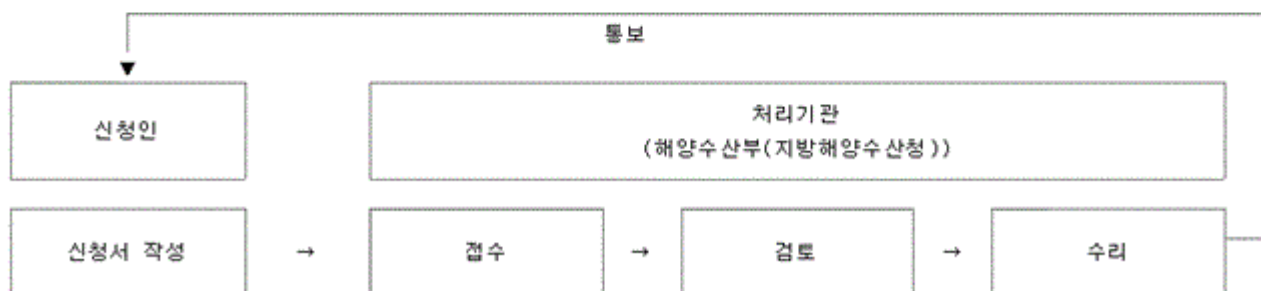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원가계산서 등 운임과 요금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2. 운임과 요금의 신 · 구대조표(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210mm × 297mm [백상지 80g/㎡(재활용품)]

■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 서식] <개정 2015.1.8.>

운송약관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5일 |
| 신고인 |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신고내용 | 사업의 종류 | 운항형태 |
| | 신고 또는 변경 사유 | |

「해운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운송약관을 신고(변경신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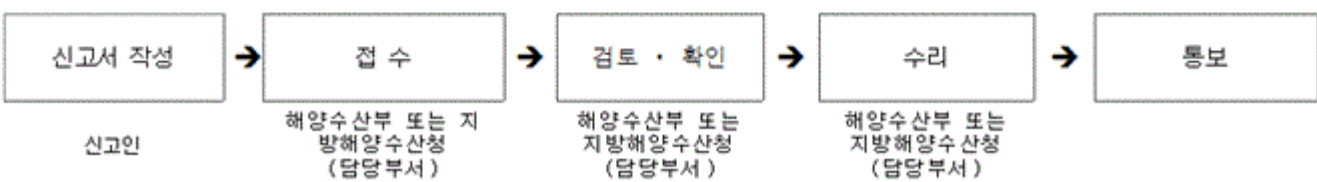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운송약관 1부(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 운송약관 신·구대비표 1부(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210mm × 297mm [백상지 80g/m²(재활용품)]

■ 해운법 시행규칙[별지 제 7호의3서식] <신설 2015.7.7.>

여객선 안전정보

| | | | |
|---------------------------|-------------------------|---------------------------------------|--------------|
| 공개자 | 업체명 | | |
| | 소재지 | 본사 | 본사 전화번호 |
| | | 지사 | 지사 전화번호 |
| | 공개
개요
(최근
3년간) | 선박
명세 | 선명 |
| 선종 | | | 총톤수
G/T |
| 여객정원
명 | | | 운항속력
(노트) |
| 화물의 적재한도
톤 | | | |
| 선박
검사
(검사일
및 결과) | | | |
| 해양
사고
이력 | | | |
| 안전
규정
위반
이력 | | | |
| 운항
관리
규정 | | 심사일자: (최초)
(변경)
운항관리규정: 세부사항 별첨 | |

「해운법」 제11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합니다.

년 월 일

공개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 × 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 9. 22.>

| | | | | |
|--|-----------|------|---------|--------|
| ☐ 사업계획 변경신고서
☐ 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서 | | | | 처리기간 |
| | | | | 신고: 2일 |
| | | | | 인가: 7일 |
| 신
고
인 | ① 상호(명칭) | | ② 설립연월일 | |
| | ③ 성명(대표자) | | ④ 생년월일 | |
| | ⑤ 주소 | | | |
| | ⑥ 사업의 종류 | | | |
| ⑦ 변경하려는 사항 및
기간 | | 변경 전 | | 변경 후 |
| | | | | |
| ⑧ 변경사유 | | | | |
| <p>「해운법」 제12조제1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 변경신고(변경인가신청)를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고인 (서명 또는 인)</p> <p>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p> | | | | |
|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1부 | | | | 수수료 |
| | | | | 없음 |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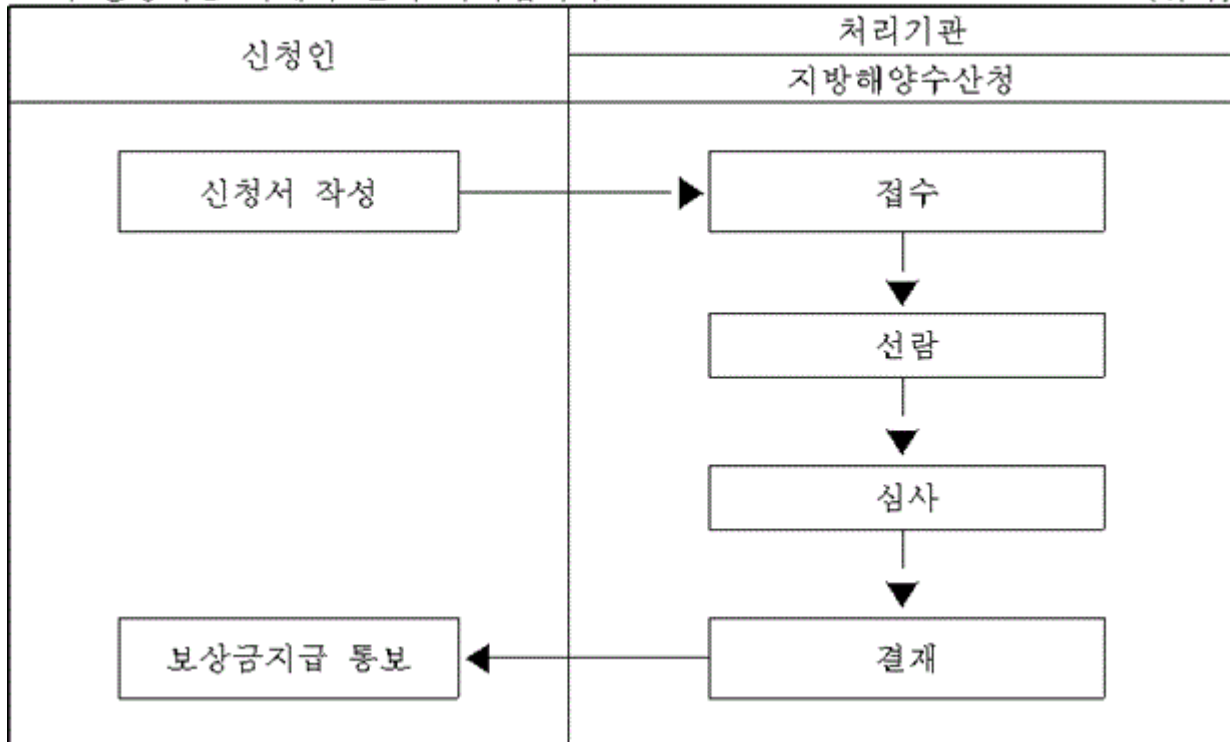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1.8.>

|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 | | | | | | 처리기간
10일 |
|--|-----------|---|--------|--|--|-------------|
| 청
구
인 | ① 상호(명칭) | | | | | |
| | ② 성명(대표자) | | ③ 생년월일 | | | |
| | ④ 주소 | | | | | |
| ⑤ 운항항로 | | | | | | |
| ⑥ 운항선박 | | | | | | |
| ⑦ 운항기간 | | | | | | |
| ⑧ 수입액 | | 원 | | | | |
| ⑨ 지출액 | | 원 | | | | |
| ⑩ 보상금 청구액 | | 원 | | | | |
| <p>「해운법」 제1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청구인 (서명 또는 인)</p> <p>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p> | | | | | | |
| 구비서류 | | | | | | 수수료 |
| 1. 수입 및 지출 명세서 | | | | | | 없음 |
| 2. 수입 및 지출 증거서류 | | | | | | |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 서식] <개정 2015.1.8.>

해상여객운송사업 승계신고서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5일 |
| 피승계인 |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승계인 |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승계내용 | 사업의 종류 | |
| | 항로 또는 사업내용 | |
| 승계가격 | | |
| 승계의 시기 | | |
| 승계의 사유 | | |

「해운법」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 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피승계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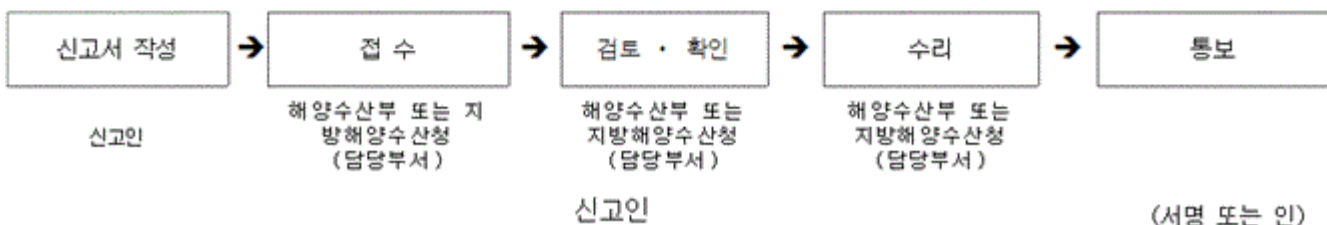
승계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 |
|------|---------------------------|--|-----------|
| 첨부서류 |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경우 | 1. 양도·양수 계약서 또는 합병 계약서 사본 1부
2. 양도·양수,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법인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수수료
없음 |
| | 상속, 그 밖의 포
괄승계의 경우 |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 |

처리절차



■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15.1.8.>

해상여객운송사업 [] 휴업 신고서
 [] 폐업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 휴업 허가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신고: 2일
허가: 7일 |
|--------------|---|--------------------------|
| 신고인
(신청인) | 상호(명칭) | 설립연월일 |
|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div style="text-align: right;">(전화번호:)</div> | |
| 사업의 종류 및 내용 | | |
|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 | | |
| 휴업 또는 폐업의 사유 | | |

「해운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허가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여객선 정기 점검표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2항 관련)

※ 점검사항의 결과란은 양호는 ○, 보통은 △, 불량은 ×로 표시합니다.

[illegible]

■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 서식] <개정 2015.7.7.>

여객선 운항관리규정 보고서

| | | | | | |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14일 | |
| 제출자 | 업체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소재지 | 본사 | | 본사 전화번호 | |
| | | 지사 | | 지사 전화번호 | |
| | 대표자성명 | | | 생년월일 | |
| 사업의
개요 | 선박
명세 | 선 명 | | 선박번호 | |
| | | 선 종 | | 총톤수 | G/T |
| | | 여객정원 | 명 | 평균속력(노트) | |
| | 항로 | 기점항 | | 종점항 | |
| | | 기항지 수 | 개소 | 항로거리 | 마일 |
| | | 운항시간 | 시간 분 | | |
| | 운항
계획 | 출항시간 | 시 분 | | |
| | | 회항시간 | 시 분 | | |
| | | 운항횟수 | 편도 | | |

「해운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 | | | | | | | |
|--------|--------|---------------------|----------|---------------------|---|---------------------|---|---------------------|---|--------|
| 첨부서류 | 운항관리규정 | | 수수료 : 없음 | | | | | | | |
| 처리절차 | | | | | | | | | | |
| 보고서 작성 | → | 접 수 | → | 검 토 | → | 결 재 | → | 확인서 작성 | → | 확인서 발급 |
| 제 출 자 | | 지방해양수산청
(안전담당부서) | | 지방해양수산청
(안전담당부서) | | 지방해양수산청
(안전담당부서) | | 지방해양수산청
(안전담당부서) | | |

■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 서식] 삭제 <[2015.7.7.](#)>

■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5 서식] 삭제 <2015.7.7.>

■ 해운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6서식] <신설 2015.7.7.>

제 호

운항관리규정 심사증명서

선 명 :

선박번호 :

항 로 :

사업자명 :

사업자 주소 :

위 선박은 운항관리규정의 심사절차에 따라 심사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m²]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신고: 2일 |
| 신고인
(신청인) | 상호(명칭) | 설립연월일 | |
| | 성명 | 생년월일 | |
| | 주소 | (전화번호:) | |

귀하



■ 해운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6. 30.>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신청서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9일 |
| 신청인 | 상호(명칭) | |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 주소
(전화번호:) | | |
| | 등록기준지(대표자) | | |
| 사업의 종류 | | 운항개시예정일 | |
| 항로 | | 운항횟수 | |
| 사업의 개요 | | 별첨 사업계획서 참조 | |

「해운법」 제2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상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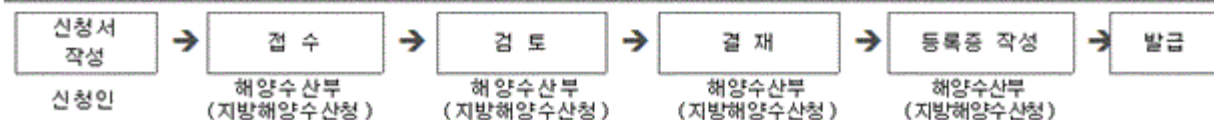
| | | |
|---------------------------------|--|---------------------------------|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1.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외국 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하며,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2. 사업계획서(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만으로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1부 | 수수료
내함:
1만원
외함:
2만원 |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확인 사항 | 1.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대한민국 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하며,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제출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확인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210mm × 297mm [백상지 80g/㎡(재활용품)]

■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개정 2022. 6. 30.>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 | | | | |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 2일 | |
| 신고인 | 상호(명칭) | | | 설립연월일 | | | |
| | 성명
(대표자) | | | 생년월일 |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
| | 사업의
종류 | | | | | | |
| 변경하려는 사항 | | 변경 전 | | 변경 후 | | | |
| | | | | | | | |
| 변경사유 | | | | | | | |

「해운법」 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한 사항을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
|------------------|--|-----------|
|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 1.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외국 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하며,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2. 변경사유 및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로
없음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1.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대한민국 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하며,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에 관한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처 리 절 차 | | | | | |
|------------------|---|---------------------------|---|---------------------------|--------|
| 신고서
작성
신고인 | → | 접 수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 → | 검 토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 |
| | | | → | 결 재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 |
| | | | | → | 등록증 발급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5.1.8.>

| | | | |
|---|----------|--------------|--------------------------------|
| 등록번호 | |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 |
| 제 호 | | | |
| ① 상호(명칭) | | ② 설립연월일 | |
| ③ 성명(대표자) | | ④ 생년월일 | |
| ⑤ 주소 | | | |
| 사업
내용의
표시 | ⑥ 사업의 종류 | | |
| | ⑦ 자본금 | | |
| | 운항
계획 | ⑧ 항로 | |
| | | ⑨ 선박명 | |
| | | ⑩ 정기항로 | 출발지: 도착지: |
| | | ⑪ 기타 | |
| ⑫ 등록조건 | | 별첨과 같음 | |
| <p>「해운법」 제2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증을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 인</p> | | | |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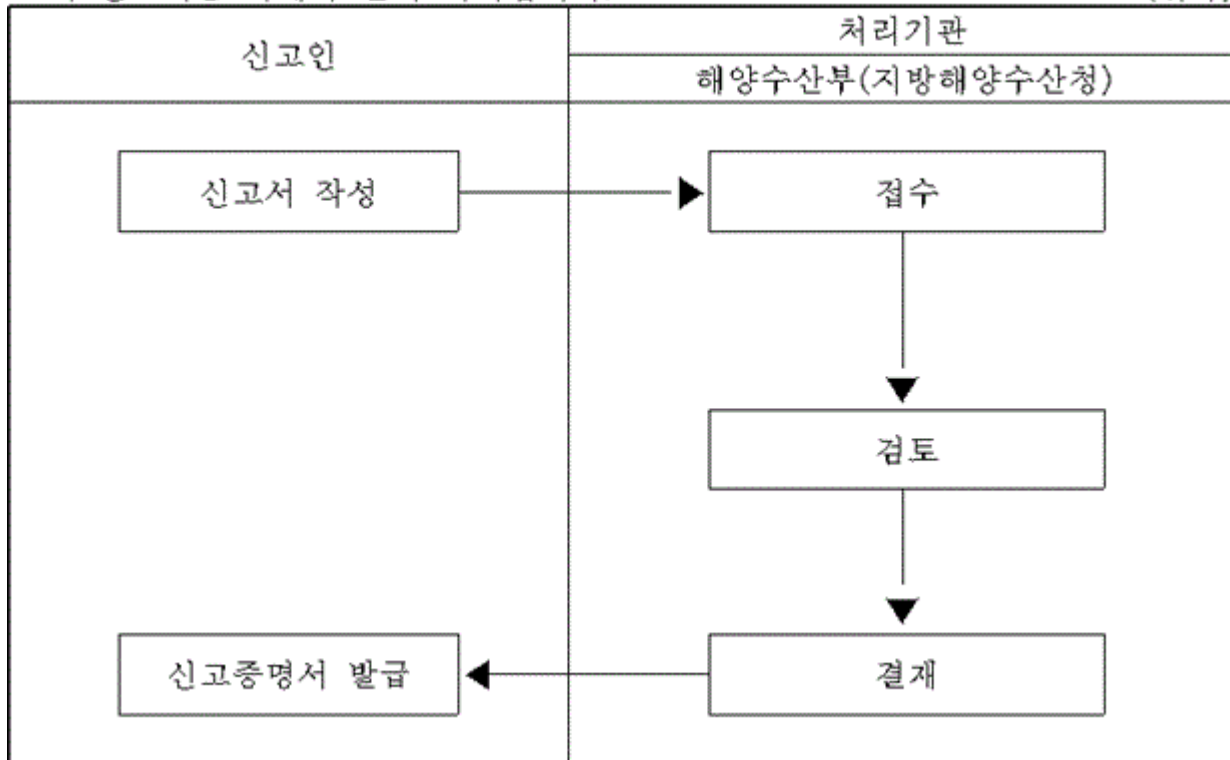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5.1.8.>

| | | | | |
|--|-----------|--------|---------|------|
|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신고서 | | | | 처리기간 |
| | | | | 2일 |
| 신
고
인 | ① 상호(명칭) | | ② 설립연월일 | |
| | ③ 성명(대표자) | | ④ 생년월일 | |
| | ⑤ 주소 | | | |
| | ⑥ 사업의 종류 | | | |
| ⑦ 대상선박 | | ⑧ 운송구간 | ⑨ 운송기간 | |
| | | | | |
| ⑩ 사유 | | | | |
| <p>「해운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일시적인 운송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고인 (서명 또는 인)</p> <p>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p> | | | | |
|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1부 | | | | 수수료 |
| | | | | 없음 |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해운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7. 9. 22.>

제 호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 신고 수리증명서

| | | | | |
|----------------|--|---------|------|------|
| 신고인 | 상호(명칭) | | | |
| | 주소 | | | |
| 신고
수리
내용 | 선박명(총톤수) | 운송화물(톤) | 운송구간 | 운송기간 |
| | | | | |
| 조건 | 신고한 내용에 따라 운항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 | | |

「해운법」 제2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 신고에 대한 수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해운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0. 2. 21.>

| | | | | |
|---|----------|----------|---------------|------|
| ☐ 운항계획
☐ 협약
신고서(☐ 변경신고서) | | | | 처리기간 |
| | | | | 2일 |
| 사
업
자 | ① 상호(명칭) | | ② 국적 | |
| | ③ 자본금 | | ④ 설립연월일 | |
| | ⑤ 주소 | (전화번호:) | | |
| | ⑥ 대표자 | | ⑦ 등록일 | |
| 대
리
점 | ⑧ 상호(명칭) | | ⑨ 사업자
등록번호 | |
| | ⑩ 자본금 | | | |
| | ⑪ 주소 | (전화번호:) | | |
| | ⑫ 대표자 | | ⑬ 등록일 | (호) |
| ⑭ 협의여부(협약신고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 | | | |
| <p>「해운법」 제28조제4항·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고인 (서명 또는 인)</p> | | | | |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 |
| 구비서류 | | | | 수수료 |
| 1. 선박운항계획서(운항계획 신고 시에만 제출하며,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1부 | | | | 없음 |
| 2. 협약서 사본 및 협약 개요서(협약 신고 시에만 제출하며, 번역문을 포함합니다) 각 1부 | | | | |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

■ 해운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0. 2. 21.>

선박운항계획서

신고일자:

신고인:

인

| ① 항로
(FM/TO) | ②
선박명 | ③ IMO
번호 | ④선박의
종류 | ⑤ 총톤수
(G/T) | ⑥적재능력
(D/W,TEU) | ⑦ 속력
(노트) | ⑧배선간격 | ⑨ 기항지 | ⑩운반형태 | ⑪선주
(OWNER) | ⑫기국
(FLAG) |
|-----------------|----------|-------------|------------|----------------|--------------------|--------------|-------|-------|-------|----------------|---------------|
| | | | | | | | | | | | |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 전의 내용과 변경 후의 내용을 대비하여 기재하십시오.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

■ 해운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17. 9. 22.>

[] 해운중개업 [] 선박대여업 등록(갱신)신청서
[] 해운대리점업 [] 선박관리업

(앞쪽)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 | 상호(명칭) | |
|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등록기준지(대표자) | |
| 계약상대방 | 상호(명칭) | |
| | 성명(대표자) | |
| 국적선박현황 | 선명 | 선박번호 |
| 사업개시예정일 | | |
| 등록갱신 기간 | | |

「해운법」 제33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해운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해운법」 제8조의 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사업계획서 1부
3.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 계약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서(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5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본과 그 번역문(외국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또는 외국 해상화물운송사업자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각 1부. 해운대리점업 및 선박관리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6. 해당 선박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선박관리업 및 선박대여업의 경우에만 제출하고, 대한민국 국적 선박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7. 등록증 원본(등록갱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등록갱신의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3천원
(갱신: 없음)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선박국적증서(대한민국국적 선박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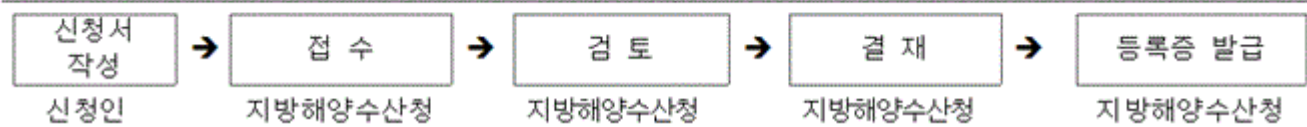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처 리 절 차



■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2016. 12. 8.>

등록번호 제 호
Registration No.

해운업등록증

Certificate of Registration for Shipping Business

사업의 종류:

Business Type:

상호:

Company name:

성명(대표자):

Representative:

생년월일:

Date of Birth:

주소:

Address:

유효기간:

Period of Validity:

최초 등록일:

Beginning Date of Registration:

「해운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of Registration is duly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 of the Maritime Transport Act and Article 2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년 월 일
Date

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Regional Maritime Affairs &
Fisheries Administration

seal

■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6. 12. 8.>

[] 해운중개업 [] 선박대여업
[] 해운대리점업 [] 선박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앞쪽)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
| 신청인 | 상호(명칭) | | |
|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등록번호 | | | |
| 변경하려는
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 | | |
| 사유 | | | |

「해운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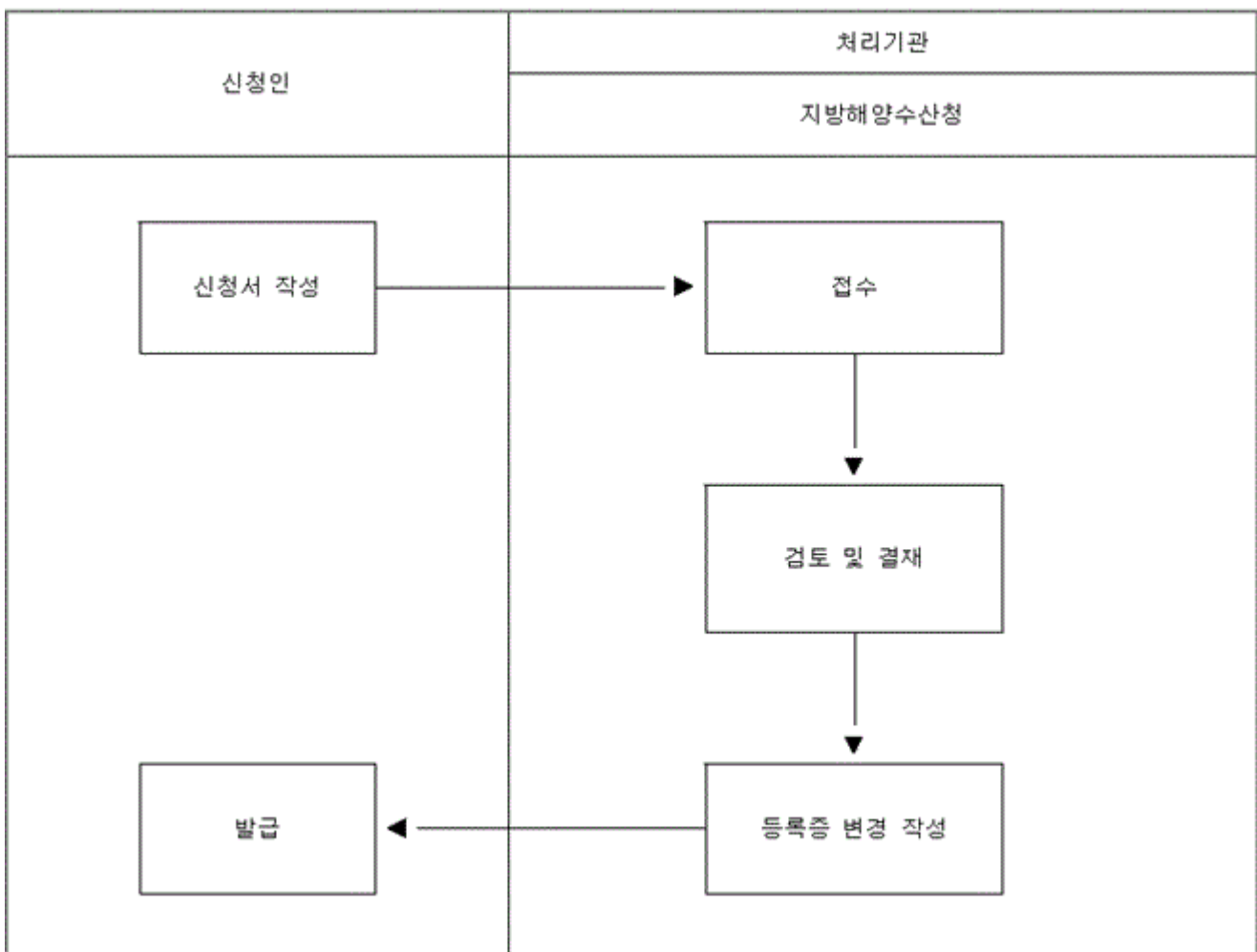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2. 1. 20.>

과징금납부통지서(수납기관보관용)

| | | |
|---|---------|--|
| ① 발행번호 | | |
| ② 상호(명칭) | | |
| 납부자 | 성명(대표자) | |
| ③ 위반일자 | | |
| ④ 위반행위 | | |
| ⑤ 납부금액 | 원 | |
| ⑥ 납부기한 | | |
| ⑦ 수납기관 | | |
| <p>「해운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flex-end;"> <div> <p>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p> <p>[인]</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수납인</div> </div> | | |

과징금영수필통지서(해양수산부보관용)

| | | |
|---|---------|--|
| ① 발행번호 | | |
| ② 상호(명칭) | | |
| 납부자 | 성명(대표자) | |
| ③ 위반일자 | | |
| ④ 위반행위 | | |
| ⑤ 납부금액 | 원 | |
| ⑥ 납부기한 | | |
| ⑦ 수납기관 | | |
|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수납기관</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flex-end;"> <div> <p>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p> <p>귀하</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수납인</div> </div> | | |

과징금납부영수증(납부자보관용)

| | | |
|---|---------|--|
| ① 발행번호 | | |
| ② 상호(명칭) | | |
| 납부자 | 성명(대표자) | |
| ③ 위반일자 | | |
| ④ 위반행위 | | |
| ⑤ 납부금액 | 원 | |
| ⑥ 납부기한 | | |
| ⑦ 수납기관 | | |
|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영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수납기관</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flex-end;"> <div></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수납인</div> </div> | | |

297mm × 210mm(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5.1.8.>

| | | |
|---|-----------|-----|
| 발행번호 제 호 | | 독촉장 |
| 사업자 | ① 상호(명칭) | |
| | ② 성명(대표자) | |
| | ③ 주소 | |
| ④ 위반행위종별 | | |
| ⑤ 과징금액 | | 원 |
| ⑥ 지정수납기관 | | |
| <p>위 금액을 . 까지 납부하도록 독촉하오니 지정수납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 인</p> | | |
| <p>공지사항: 위의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해운법」 제20조·제32조 또는 제36조에 따른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p> | | |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

■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 서식] <개정 2020. 7. 30.>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

1. 신청인

| | |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업 체 명 | | 대 표 자 | (인) |
|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보조금 송금처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 | |

2. 거래내역

| 연번 | 선종 | 선명 | 총톤수 | 사용유종 | 단가
(원/ℓ) | 주유량
(ℓ) | 금액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유가보조금 청구액

| 연번 | 사용
유종 | 유류 사용량 | | 단가(원/ℓ)
(C) | 보조금액(원)
(BxC) |
|----|----------|-----------------|------------------|----------------|------------------|
| | | 총 주유량(ℓ)
(A) | 경유 함유량(ℓ)
(B) | | |
| | | | | | |
| | | | | | |

신청인
제출서류

1. 유류판매(공급)사업자별 거래내역서 1부
2. 별지 제21호의3 서식의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 1부
3. 세금계산서 1부
4. 운항실적을 증명하는 자료(「항만법」 제26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로 확인되지 않는 운항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5. 유류세를 환급받았거나 유류세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운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주유량(A)은 사용유종의 총 주유량을 의미합니다.

※ 경유함유량(B)은 별지 제21호의3 서식의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 실제 공급받은 경유 주유량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경유가 포함된 석유제품을 주유받았다 하더라도 경유 외의 유류로 분류되어 유류세가 부과되지 않는 유류(LRFO, B-A, B-C 등 중유로 분류되는 유류)를 주유받은 경우를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 '거래내역'란의 연번과 '보조금청구액'란의 연번은 일치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

이 확인서가 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신청을 위한 증빙서류로 작성됨을 인지하고 다음에 적은 석유제품을 판매(공급) 및 인수하였음을 판매(공급)자와 인수자간 확인한 후 서명합니다.

※ 주의 : 이 확인서를 작성함에 있어 허위의 내용을 적는 경우 형사상 고발조치와, 「해운법」 제41조의3 및 「해운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 주유일자 | 주유선박 | 인수지 | 유종 | 총 주유량(ℓ) | 경유함유량(ℓ)*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유함유량(ℓ)은 주유된 “경유” 주유량을 의미하며,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렌딩(Blending)유의 경우 제품에 포함된 경유량을 별도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 경유가 포함된 제품을 주유한 경우에도 그 제품이 경유 외의 유류로 분류되어 유류세가 부과되지 않는 유류(LRFO, B-A, B-C 등 중유로 분류되는 유류)인 경우 이를 제외하고 경유함유량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석유제품 판매(공급)자 | 석유제품 인수자 |
|--------------|-----------|
| 소속(회사명) : | 소속(회사명) : |
| 선명 : | 선명 : |
| 직책(담당) : | 직책(담당) : |
| 성명 : (서명) | 성명 : (서명) |

■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4 서식] <개정 2015.1.8.>

보조금 지급실적 보고서

(지급기간 :)

| 관할 해양수산청 | 선 박 | | 유 류 사 용 량 | | | 보조금(원/ℓ) |
|----------|-------|-------|-----------|---------|----------|----------|
| | 등록선박수 | 지급선박수 | 유종 | 총사용량(ℓ) | 경유사용량(ℓ) | |
| | | | | | | |

※ 총사용량은 주유받은 석유제품의 총량을 의미합니다.

※ 경유함유량은 별지 제21호의3 서식의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 실제 공급받은 경유 주유량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경유가 포함된 석유제품을 주유받았다 하더라도 경유 외의 유류로 분류되어 유류세가 부과되지 않는 유류(LRFO, B-A, B-C 등 중유로 분류되는 유류)를 주유받은 경우를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 보조금 단위를 혼돈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전분기 미지급분을 금분기에 지급하였더라도 금분기 통계에 반영합니다.

[illegible]

■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6서식] <개정 2023. 9. 26.>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90일 |
| 신청인 | 기업명(상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 |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인증신청
사업분야 | []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 | |
| | []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 | | |
| | [] 화주 | | |

「해운법」 제4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
| 첨부서류 | 1.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및 그 화주
가.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나. 최근 3년간의 항로별 해상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을 증명하는 서류
다.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 및 그 화주
가.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나. 화물운송계약을 증명하는 서류
다.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 담당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자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심사 | → | 인증 | → | 통지 |
| 신청인 | | | | 처리기관: 해양수산부(인증전담기관) | | | | |

210mm × 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 2서식] <신설 2020. 2. 21.>

인증번호 제 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서

1. 기업명(상호명):
2.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3. 소재지:

「해운법」 제47조의2제1항 및 「해운법 시행규칙」 제26조의8제1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5.1.8.>

제 호

조사공무원증

사진
(4cm × 5cm)

소속:

직위(직급):

성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해운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선박·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서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할 권한을 가진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 [인]

81mm × 55mm(일반용지 60g/m²)



항만운송사업법

[시행 2026. 8. 13.] [법률 제21641호, 2026. 5. 12.,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 051 - 773 - 5774, 5773

제1장 총칙 <개정 2009. 5. 27.>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운송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항만운송”이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된 화물을 화물주(貨物主)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선박으로부터 인수하거나 화물주에게 인도하는 행위
2.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화물주로부터 인수하거나 선박에 인도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에 선행하거나 후속하여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행위를 하나로 연결하여 하는 행위
4. 항만에서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일
5.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艇船)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과 항만 외의 장소와의 사이(이하 “지정구간”이라 한다)에서 부선 또는 범선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와 항만 또는 지정구간에서 부선 또는 뗏목을 예인선(曳引船)으로 끌고 항해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은 제외한다.
 - 가. 「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하는 운송
 - 나.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선을 이용하여 하는 여객운송에 수반되는 화물 운송
 - 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운송
6.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된 화물을 창고 또는 하역장[수면(水面) 목재저장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들여놓는 행위
7.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하역장에서 내가는 행위
8. 항만에서 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화물을 하역장에서 싣거나 내리거나 보관하는 행위
9. 항만에서 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화물을 부선에 싣거나 부선으로부터 내리는 행위
10. 항만이나 지정구간에서 목재를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하는 행위

11. 항만에서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된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에 들여놓는 행위나,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된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에 들여놓는 행위
12. 항만에서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될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로부터 내가는 행위나,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될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로부터 내가는 행위
13. 항만에서 제11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에서 싣거나 내리거나 보관하는 행위
14. 선적화물(船積貨物)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거나 그 화물의 인도·인수를 증명하는 일[이하 “검수(檢數)”라 한다]
15. 선적화물 및 선박(부선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증명·조사·감정을 하는 일[이하 “감정(鑑定)”이라 한다]
16.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일[이하 “검량(檢量)”이라 한다]

② 이 법에서 “항만운송사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항만운송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항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9. 6. 9., 2013. 3. 23.>

1.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지정하는 항만(항만시설을 포함한다)
2.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외의 항만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수역(水域)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항만시설을 포함한다)
3.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항만시설

④ 이 법에서 “항만운송관련사업”이란 항만에서 선박에 물품이나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항만용역업·선용품공급업·선박연료공급업·선박수리업 및 컨테이너수리업을 말하며, 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선용품공급업은 건조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 등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17. 10. 31.>

⑤ 이 법에서 “검수사”란 직업으로서 검수에 종사하는 자를, “감정사”란 직업으로서 감정에 종사하는 자를, “검량사”란 직업으로서 검량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⑥ 이 법에서 “부두운영회사”란 제3조제1호에 따른 항만하역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7항에 따른 관리청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관리청등”이라 한다)와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하고,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및 그 항만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부대시설 등을 일괄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신설 2016. 12. 27., 2020. 1. 29., 2026. 5. 12.>

1.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컨테이너 부두로 정하여 고시한 항만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2. 그 밖에 특정 화물에 대하여 전용 사용되는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부두운영회사가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항만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⑦ 이 법에서 “관리청”이란 항만운송사업·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관청을 말한다.

<신설 2020. 2. 18., 2023. 6. 20.>

1.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 해양수산부장관

2.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⑧ 이 법에서 “항만종합서비스업”이란 제4항에 따른 항만용역업(이안(離岸) 및 접안(接岸))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및 화물 고정 행위가 포함되어야 한다)과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수사업·감정사업 및 검량사업 중 1개 이상의 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사업을 말한다.<신설 2023. 6. 20.>

[전문개정 2009. 5. 27.]

제3조(사업의 종류) 항만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하역사업(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사업)
2. 검수사업(제2조제1항제14호의 행위를 하는 사업)
3. 감정사업(제2조제1항제15호의 행위를 하는 사업)
4. 검량사업(제2조제1항제16호의 행위를 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 5. 27.]

제2장 항만운송사업 <개정 2009. 5. 27.>

제4조(사업의 등록) ① 항만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② 제3조제1호의 항만하역사업과 같은 조 제2호의 검수사업은 항만별로 등록한다.

③ 제3조제1호의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은 이용자별·취급화물별 또는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별로 등록하는 한정하역사업과 그 외의 일반하역사업으로 구분하여 행한다.<개정 2009. 6. 9.>

[전문개정 2009. 5. 27.]

제5조(등록의 신청) ①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사업계획과 제6조의 등록기준을 검토한 후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

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전문개정 2009. 5. 27.]

제6조(등록기준) 제4조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시설·자본금·노동력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관리청은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하역사업에 대하여는 이용자·취급화물 또는 항만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전문개정 2009. 5. 27.]

제7조(검수사등의 자격 및 등록) ① 검수사·감정사 또는 검량사(이하 “검수사등”이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검수사등 자격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수사등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신설 2018. 12. 31.>

③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12. 31.>

[전문개정 2009. 5. 27.]

제7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부터 3년간 같은 종류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2. 27.]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6. 12. 27.>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검수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본조신설 2012. 12. 18.]

제8조의2(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① 검수사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검수사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검수사등의 자격증의 양도·양수 또는 대여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1. 29.>

[본조신설 2012. 12. 18.]

제8조의3(자격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검수사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12. 18.]

제9조(등록의 말소)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수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1. 업무를 폐지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전문개정 2009. 5. 27.]

제10조(운임 및 요금) ①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에서 하역하는 화물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해당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 ③ 검수사업·감정사업 또는 검량사업(이하 “검수사업등”이라 한다)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정하여 관리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 ④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31., 2020. 2. 18.>
- ⑤ 관리청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12. 31., 2020. 2. 18.>

⑥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경우 표준운임 산출 및 표준요금의 산정을 위하여 선박운항업자, 부두운영회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4. 3. 24., 2016. 12. 27., 2018. 12. 31., 2020. 2. 18.>

⑦ 관리청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운임 및 요금에 대하여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운임 및 요금의 변경 또는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3. 24., 2018. 12. 31., 2020. 2. 18.>
[전문개정 2009. 5. 27.]

제11조 삭제 <1999. 2. 8.>

제12조 삭제 <1999. 2. 8.>

제13조 삭제 <1999. 2. 8.>

제14조 삭제 <1999. 2. 8.>

제15조 삭제 <1999. 2. 8.>

제16조 삭제 <1999. 2. 8.>

제17조 삭제 <1999. 2. 8.>

제18조 삭제 <1999. 2. 8.>

제19조 삭제 <1999. 2. 8.>

제20조 삭제 <1999. 2. 8.>

제21조 삭제 <1999. 2. 8.>

제22조 삭제 <1999. 2. 8.>

제23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만운송사업자”라 한다)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1. 항만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항만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항만운송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시설·장비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항만운송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개정 2010. 3. 31., 2016. 12. 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 [전문개정 2009. 5. 27.]

제24조 삭제 <1999. 2. 8.>

제25조 삭제 <1999. 2. 8.>

제26조(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① 관리청은 항만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항만운송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1. 정당한 사유 없이 운임 및 요금을 인가·신고된 운임 및 요금과 다르게 받은 경우
 2. 제6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에 규정된 죄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4.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
 5.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등록한 경우
 6.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 5. 27.]

제26조의2(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등) ① 항만종합서비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노동력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증 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만종합서비스업자”라 한다)는 제2조제8항의 각각의 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④ 항만종합서비스업자의 권리·의무의 승계,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등에 대하여는 제23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운송사업자”는 “항만종합서비스업자”로 본다.

[본조신설 2023. 6. 20.]

제2장의2 항만운송관련사업 <개정 2009. 5. 27.>

제26조의3(사업의 등록 등) ①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업종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선용품공급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2017. 10. 31., 2020. 2. 18.>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에 사용하려는 장비의 목록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 12. 27., 2020. 2. 18.>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는 사용하려는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6. 12. 27., 2017. 10. 31., 2020. 2. 18.>

④ 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6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31., 2020. 2. 18.>

⑤ 관리청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12. 31., 2020. 2. 18.>

⑥ 제1항에 따른 선박수리업과 선용품공급업의 영업구역은 제2조제3항 각 호의 항만시설로 하고,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연료공급선(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한정한다)은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신설 2017. 10. 31., 2018. 12. 31.>

⑦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에 필요한 자본금, 시설,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12. 27., 2017. 10. 31., 2018. 12. 31.>

[전문개정 2009. 5. 27.]

[제목개정 2016. 12. 27.]

제26조의4(권리·의무의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이하 “항만운송관련사업자”라 한다)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1.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전문개정 2009. 5. 27.]

제26조의5(등록의 취소 등) ① 관리청은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0. 31., 2018. 12. 31., 2020. 2. 18.>

1.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1의2.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2. 제26조의3제7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경우

4.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

5.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2장의3 부두운영회사의 운영 등 <신설 2016. 12. 27.>

제26조의6(부두운영계약의 체결 등) ① 관리청등은 항만 운영의 효율성 및 항만운송사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2.>

② 제1항에 따른 부두운영계약(이하 “부두운영계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두운영회사가 부두운영계약으로 임차·사용하려는 항만시설 및 그 밖의 장비·부대시설 등(이하 이 장에서 “항만시설등”이라 한다)의 범위

2. 부두운영회사가 부두운영계약 기간 동안 항만시설등의 임차·사용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화물유치·투자 계획과 해당 화물유치·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부두운영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위약금에 관한 사항

3.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항만시설등의 임대료에 관한 사항

4. 계약기간

5. 그 밖에 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등의 사용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부두운영회사의 선정 절차 및 부두운영계약의 갱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7.]

제26조의7(화물유치 계획 등의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 ① 관리청등은 제26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부두운영회사에 대하여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부두운영회사가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데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5. 12.>

② 제1항에 따른 위약금의 부과 대상·기간, 산정 방법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7.]

제26조의8(부두운영회사 운영성과의 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부두운영회사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관리청등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부두운영회사에 대하여 항만시설등의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6. 5. 12.>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항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12. 27.]

제26조의9(부두운영계약의 해지) ① 관리청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부두운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9., 2026. 5. 12.>

1.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항만시설등을 부두운영회사에 계속 임대하기 어려운 경우
2. 부두운영회사가 항만시설등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3. 항만시설등이 멸실되거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두운영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② 관리청등은 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계약을 해지하려면 서면으로 그 뜻을 부두운영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12.>

[본조신설 2016. 12. 27.]

제26조의10(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 사용)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 사용에 대해서는 「항만법」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 12. 27.]

제3장 보칙 <개정 2009. 5. 27.>

제27조 삭제 <1999. 2. 8.>

제27조의2(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①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2020. 2. 18.>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31., 2020. 2. 18.>

③ 관리청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12. 31., 2020. 2. 18.>

④ 제1항에 따른 일시적 영업행위의 업종별 특성에 따른 신고 요건, 신고 절차 및 신고자의 준수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12. 31.>

[전문개정 2009. 5. 27.]

제27조의3(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교육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방법 및 교육훈련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7.]

[종전 제27조의3은 제27조의4로 이동 <2016. 12. 27.>]

제27조의4(교육훈련기관의 설립 등) ①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항만운송·항만안전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③ 교육훈련기관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13. 3. 23.>

④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대상자, 교육훈련 과정, 교육훈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교육훈련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해당 교육훈련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⑥ 교육훈련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교육훈련기관의 운영, 정관,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16. 12. 27.>]

제27조의5(표준계약서의 보급 등)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만운송사업·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작성·보급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6. 20.]

제27조의6(과징금) ① 관리청은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제26조제1항 또는 제26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0. 3. 24.>

[전문개정 2009. 5. 27.]

제27조의7(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 ①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구성한 단체(이하 “항만운송사업자 단체”라 한다),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가 구성한 단체(이하 “항만운송근로자 단체”라 한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필요한 적정한 근로자의 수 산정, 근로자의 채용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항만별로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협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7.]

제27조의8(항만운송 분쟁협의회 등) ① 항만운송사업자 단체, 항만운송근로자 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항만운송과 관련된 분쟁의 해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항만별로 항만운송 분쟁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항만운송사업자 단체와 항만운송근로자 단체는 항만운송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 분쟁협의회를 통하여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분쟁기간 동안 항만운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 분쟁협의회 구성·운영 및 협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7.]

제27조의9(항만운송사업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운송사업·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하여 항만운송사업자·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6. 20.]

제28조(수수료) 제4조、제7조 또는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전문개정 2009. 5. 27.]

제28조의2(보고·검사)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사업장、사무실, 부선、예선 등의 선박 또는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보유 장비 및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2020. 2. 18.>

1.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한 항만하역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사항
3.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신고한 사업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16. 12. 27.>

[본조신설 2014. 3. 24.]

제29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2020. 2. 18.>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6. 12. 27.>

1. 항만운송사업자 단체
2. 검수사업등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4. 제27조의4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위탁 업무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27.]

제29조의2(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이 법에 따른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 6. 9., 2020. 1. 29.>

[전문개정 2009. 5. 27.]

제29조의3(청문)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20. 2. 18.>

1.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2. 제26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3. 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전문개정 2009. 5. 27.]

제29조의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항만운송사업자 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 12. 27.>

[전문개정 2009. 5. 27.]

제4장 벌칙 <개정 2009. 5. 27.>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 29.>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항만운송사업을 한 자
- 1의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검수사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사람, 다른 사람의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양수·대여받은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검수사등의 자격증의 양도·양수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
2.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한 자

[전문개정 2009. 5. 27.]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0. 31.>

1. 제4조 또는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을 위반하여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한 자
- 1의2.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여 선박연료공급업을 한 자
2. 제27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시적 영업행위를 한 자

[전문개정 2009. 5. 27.]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1.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검수·감정 또는 검량 업무에 종사한 자
-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 1의3. 삭제 <2020. 1. 29.>
2.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가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3. 제26조 또는 제26조의5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9. 5. 27.]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2. 27.>

1.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0. 2. 18.>

[본조신설 2014. 3. 24.]

제35조 삭제 <1997. 4. 10.>

부칙 <제1404호, 1963. 9. 19.>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하역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한다.
-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검수사업등을 영위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면허를 받을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하여 검수사업등을 영위할 수 있다.
- ④(동전) 이 법 시행당시 해운관청의 등록을 받은 검수원등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⑤(동전) 운임·요금 및 항만운송약관은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에 한하여 종전의 예에 의하여 수수 또는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2875호, 1975. 12. 31.>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개항질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계내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항만운송부대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3011호, 1977. 12. 16.> (정부조직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⑤(항만청의 명칭변경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1. 생략

2. 해상운송사업법, 선원법, 선원보험법, 항만운송사업법, 항만법중 “항만청장”을 “해운항만청장”으로, “지방항만관리청장”을 “지방해운항만청장”으로 한다.

3. 내지 7. 생략

부칙 <제3714호, 1983.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항만운송부대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운송부대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항만운송부대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해외항만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해외항만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운항만청장에게 제26조의6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358호, 1991. 3. 8.> (항만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항만운송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항만법 제2조제1항”을 각각 “항만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⑧생략

부칙 <제4573호, 1993. 8. 5.> (해외건설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항만운송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중 “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공사 및 용역을 ” 을 “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공사를 ” 로 한다.

⑤생략

부칙 <제4925호,1995. 1. 5.> (항만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항만운송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이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5335호,1997. 4. 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검수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수원등의 등록을 한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검수사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면허 및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항만운송사업의 면허 및 항만운송부대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사단법인 한국항만운송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항만운송협회는 사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협회가 승계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사단법인 한국항만운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사단법인 한국항만운송협회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협회가 이를 승계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해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 항만운송부대사업 ” 을 “ 항만운송관련사업 ” 으로 한다.

부칙 <제5453호,1997. 12. 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
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454호,1997. 12. 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
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919호,1999. 2. 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운임 및 요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운임 및 요
금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항만시설에서 하역하는 화물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품목의 화
물의 운임 및 요금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물품공급업을 등록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항만운송관련사업중 물품공급업을
등록한 자는 제2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칙 <제6305호,2000. 12. 29.> (관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항만운송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중 “ 관세법 제179조·제18조 또는 제182조 ” 를 “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 로 한다.

1^ 내지1(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6627호,2002. 1. 26.> (민사집행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4(생략

5) 항만운송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중 “ 민사소송법 ” 을 “ 민사집행법 ” 으로 한다.

<51>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6890호,2003. 5.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물품공급업을 신고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공급업을 신고한 자는 제2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사단법인 한국항만연수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항만연수원은 사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의 모든 권리·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교육훈련기관이 승계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사단법인 한국항만연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사단법인 한국항만연수원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교육훈련기관이 이를 승계한다.

부칙 <제7428호,2005. 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36>생략

<137>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중 “ 파산법 ” 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로 한다.

<138>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8379호,2007. 4. 11.> (항만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 중 “ 항만법 제70조의3 ” 을 “ 「항만법」 제77조 ” 로 한다.

⑪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83> 까지 생략

<684>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본문ㆍ단서 및 제3항제1호ㆍ제2호,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 제26조의3제1항 본문 및 제28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3호,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 단서,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의6제1항 및 제3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3제1항 본문, 제2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의2제1항 및 제29조제1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26조의3제1항 단서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27조의3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8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81호, 2008. 3. 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32호, 2009. 5.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73호,2009. 6. 9.> (항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2\$ 까지 생략

2%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 ”을 “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 외 ”를 “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외 ”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 「항만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를 “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 「항만법」 제2조제6호 ”를 “ 「항만법」 제2조제5호 ”로 한다.

제29조의2 중 “ 「항만법」 제77조 ”를 “ 「항만법」 제89조 ”로 한다.

2^ 및2&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0219호,2010. 3. 31.> (지방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3호 중 “ 「지방세법」 ”을 “ 「지방세기본법」 ”으로 한다.

<58>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1595호,2012. 1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수사등의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690호,2013. 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59>까지 생략

<660>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다목,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6조의3제1항 본문, 제28조 및 제29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3호,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 단서,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의3제3항, 제27조의6제1항·제3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2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595호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595호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의3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66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546호, 2014.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임 및 요금의 인가에 관한 특례)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해당하는 화물에 대하여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14476호, 2016. 12. 27.> (지방세징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9>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511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3, 제26조의5제1항, 제28조, 제31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6조(제26조의3 및 제26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수사등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검수사등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박연료공급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사용하려는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7. 10. 31.>

[제목개정 2017. 10. 31.]

제4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8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항만시설의 임대계약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항만법」 제30조에 따라 항만시설운영자와 항만시설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항만공사법」 제29조에 따라 항만공사와 항만시설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항만하역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는 해당 계약의 종료일까지 제2조제6항 및 제26조의6부터 제26조의10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0조제1항 본문 중 “ 제26조제1항 ” 을 “ 제26조제1항, 제26조의3제1항, 제26조의5제1항, 제27조의2제1항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 제26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 을 “ 제26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 로 한다.

부칙 <제15011호, 2017. 10.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 중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이 된 선박연료공급선의 영업구역 제한 완화 관련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박급유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물품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용품공급업자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선박급유업자 ” 를 “ 선박연료공급업자 ”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 선박급유업 ” 을 “ 선박연료공급업 ”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급유업자”를 각각 “선박연료공급업자”로 한다.

제115조제2항 중 “선박급유업자”를 “선박연료공급업자”로 한다.

②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제1항제1호 중 “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한다.

부칙 <제16161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임 및 요금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운임 및 요금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용품공급업의 신고 또는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박수리업 영업구역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등록한 선박수리업의 영업구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6902호, 2020. 1. 29.> (항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 까지 생략

<51>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항만법」 제30조제1항 본문”을 “「항만법」 제41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9조의2 중 “「항만법」 제89조”를 “「항만법」 제26조”로 한다.

<52>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6903호, 2020. 1. 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04호, 2020. 1. 29.>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9제1항제1호 중 “「항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을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17007호, 2020. 2. 18.>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9501호, 2023. 6.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관리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신청한 자의 관리청은 제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641호, 2026. 5. 1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3. 12. 21.] [대통령령 제33954호, 2023. 12. 12.,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 051 - 773 - 5774, 5773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운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14.]

제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4. 30., 2022. 11. 15.>

1. 항만용역업: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사업

가. 통선(通船)으로 본선(本船)과 육지 사이에서 사람이나 문서 등을 운송하는 행위

나. 본선을 경비(警備)하는 행위나 본선의 이안(離岸) 및 접안(接岸)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선박의 청소[유창(油艙) 청소는 제외한다], 오물 제거, 소독, 폐기물의 수집·운반, 화물 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

라.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

2. 선용품공급업: 선박(건조 중인 선박 및 해양구조물 등을 포함한다)에 음료, 식품,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선용품을 공급하는 사업

3.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

3의2. 선박수리업: 선체, 기관 등 선박시설 및 설비를 수리, 교체 또는 도색하는 사업

4. 컨테이너수리업: 컨테이너를 수리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 12. 14.]

제3조 삭제 <1999. 5. 27.>

제4조(항만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6조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고, 검수사업·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 12. 14.]

제5조(검수사등의 자격시험) ① 법 제7조에 따른 검수사·감정사 또는 검량사(이하 “검수사등”이라 한다)의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그 종류별로 시행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험 일시 및 장소, 시험과목, 응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 2013. 3. 23.>

③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2. 14.]

제6조 삭제 <1999. 5. 27.>

제7조(시험의 구분) ①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2. 7. 4.>

②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2. 7. 4.>

③ 면접시험의 시험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 7. 4.>

[전문개정 2009. 12. 14.]

제7조의2(시험의 일부면제)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그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2. 7. 4.]

제8조(시험과목) 시험과목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09. 12. 14.]

제9조(합격결정)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은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시험별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2. 7. 4.>

1. 필기시험: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2. 면접시험: 60점 이상인 사람

[전문개정 2009. 12. 14.]

제10조(자격증의 발급)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2. 14.]

제11조(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법 제26조, 제26조의2제4항 및 제26조의5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종합서비스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3. 12. 12.>

[전문개정 2009. 12. 14.]

제11조의2(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기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3. 12. 12.]

제1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 법 제26조의3제7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4. 30., 2020. 9. 8.>

[전문개정 2009. 12. 14.]

제13조 삭제 <1999. 5. 27.>

제14조(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해당 항만에 없거나 행정처분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사업의 성질상 해당 항만의 사업자가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②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법 제27조의2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 영업행위의 신고를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 ③ 법 제27조의2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신고한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는 그 신고한 내용에 맞게 영업행위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14.]

제15조(교육훈련기관의 설립)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정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2. 26.>

[전문개정 2009. 12. 14.]

제16조(교육훈련 과정 등) 법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대상자,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훈련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7. 12. 26.>

[전문개정 2009. 12. 14.]

제17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경비 부담) 법 제27조의4제5항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해당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경비의 내용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7. 12. 26.>

[전문개정 2009. 12. 14.]

제18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① 교육훈련기관은 법 제27조의4제7항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2. 26.>

- ② 교육훈련기관은 법 제27조의4제7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12. 26.>

[전문개정 2009. 12. 14.]

제19조(교육훈련기관의 정관) 법 제27조의4제7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6.>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존립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전문개정 2009. 12. 14.]

제20조(교육훈련기관의 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의4제7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업무·재산 또는 회계관리에 관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12. 26.>

[전문개정 2009. 12. 14.]

제21조 삭제 <1999. 5. 27.>

제22조 삭제 <1999. 5. 27.>

제23조 삭제 <1999. 5. 27.>

제24조 삭제 <1999. 5. 27.>

제2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관리청은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9. 8.>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관리청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9. 8., 2023. 12. 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9. 8.>

⑤ 삭제 <2021. 9. 24.>

[전문개정 2009. 12. 14.]

제2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법 제27조의6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9와 같다.

[전문개정 2009. 12. 14.]

제26조의2(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27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항만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수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의7제1항에 따른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이하 “수급관리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항만의 항만운송사업자가 구성한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다만, 해당 단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단체 간 상호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
2. 해당 항만의 항만운송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그 자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해당 항만의 항만운송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의5에서 같다)가 구성한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다만, 해당 단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단체 간 상호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

3. 제1항의 사람 1명

[본조신설 2017. 12. 26.]

제26조의3(수급관리협의회의 운영) ①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은 수급관리협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수급관리협의회의 회의는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수급관리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관리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급관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2. 26.]

제26조의4(수급관리협의회의 협의사항) 수급관리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항만운송사업에 필요한 적정한 근로자의 수 산정에 관한 사항
2. 항만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채용기준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이 항만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7. 12. 26.]

제26조의5(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27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항만운송사업의 분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의8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이하 “분쟁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쟁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항만의 항만운송사업자가 구성한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다만, 해당 단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단체 간 상호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
2. 해당 항만의 항만운송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가 구성한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다만, 해당 단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단체 간 상호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
3. 제1항의 사람 1명

[본조신설 2017. 12. 26.]

제26조의6(분쟁협의회의 운영) ①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은 분쟁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분쟁협의회의 회의는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③ 분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분쟁당사자는 분쟁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2. 26.]

제26조의7(분쟁협의회의 협의사항) 분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항만운송과 관련된 노사 간 분쟁의 해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이 항만운송과 관련된 분쟁의 예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7. 12. 26.]

제27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수역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2. 26., 2018. 4. 30., 2022. 11. 15., 2023. 12. 12.>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2. 법 제5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서 접수 및 등록증 발급
3. 법 제6조 단서에 따른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의 완화
4. 제10조에 따른 검수사 자격증의 발급
5. 법 제10조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에 대한 운임·요금의 인가·변경인가 및 신고수리·변경신고수리, 검수사업자에 대한 요금의 신고수리 및 변경신고수리, 운임·요금의 변경 또는 조정에 필요한 명령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명령
 - 6의2.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 6의3.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신청서 접수 및 등록증 발급
 - 6의4. 법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명령
 - 6의5. 법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선용품공급업의 신고수리,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신청서 등 서류의 접수 및 선박연료공급업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수리
 - 6의6. 법 제26조의5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명령
 - 6의7. 법 제27조의2에 따른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의 신고수리
 - 6의8.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의 종사 제한
 7. 법 제27조의6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 7의2.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 출입·검사 또는 질문
 8. 법 제29조의3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청문
 9.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 무역항에서의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의 종사 제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2020. 9. 8.>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와 이 영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개정 2012. 7. 4., 2013. 3. 23.>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등의 등록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검수검정협회에 위탁한다.<개정 2013. 3. 23.>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업무를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한다.<신설 2017. 12. 26.>
- [전문개정 2009. 12. 14.]

제2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등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2020. 9. 8., 2023. 12. 12.>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시험 및 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무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20. 9. 8., 2023. 12. 12.>

[본조신설 2017. 3. 27.]

제28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 및 별표 6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2. 30.]

제29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본조신설 2014. 9. 24.]

부칙 <제15533호, 1997. 12. 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5598호, 1997. 12. 31.>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71호, 1998.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72호, 1999. 5.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26호, 2003. 11.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44호, 2008. 1. 1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소독, 화물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

1& 부터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0722호,2008. 2. 29.>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5> 까지 생략**

<126>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항, 제10조, 제15조,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 제25조제1항·제2항 본문·제4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표 1 제1호 한정하역사업란·비고란 제1호·제3호, 별표 4 비고란, 별표 8 제2호·제3호 및 별표 9 비고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10조, 제14조제2항, 제15조 및 별표 1 제1호 내용란·비고란 제3호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표 1 비고란 제3호 및 별표 6 비고란 제3호 단서·제5호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127>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1002호,2008. 9.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5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878호,2009. 12.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관리항에서의 권한의 시·도지사 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지방관리항에서 제27조제2항 각 호의 권한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행위는 제

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지방관리항에서 제27조제2항 각 호의 권한과 관련하여 한 행위와 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이 한 행위는 이 영에 따라 시·도지사가 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23759호, 2012. 5. 1.> (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935호, 2012. 7.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7조의2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하역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평택·당진항에서 3급지의 등록기준에 따라 일반하역사업의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일반하역사업의 등록을 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평택·당진항에서 3급지의 일반하역사업을 등록한 자(제1항에 따라 평택·당진항에서 일반하역사업을 등록한 자를 포함한다)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2급지의 일반하역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2급지의 일반하역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24443호, 2013. 3. 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4>까지 생략

<135>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항, 제10조, 제15조,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별표 1의 한정하역사업란, 같은 표 비고의 제1호·제3호, 별표 4 비고 및 별표 8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비 부담의 방법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

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10조, 제14조제2항, 제15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표 1 제1호의 내용란 및 같은 표 비고의 제3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36>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5050호,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638호, 2014. 9. 24.>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34호, 2015. 3.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유선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박급유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별표 6 비고 제5호의2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총톤수 50톤 이상의 급유선: 이 영 시행 후 1년
2. 총톤수 50톤 미만의 급유선: 이 영 시행 후 2년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박급유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별표 6 비고 제5호의2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총톤수 100톤 이상의 급유선: 이 영 시행 후 1년
2. 총톤수 100톤 미만의 급유선: 이 영 시행 후 2년

부칙 <제27094호, 2016. 4.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조차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선박급유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유조차량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박급유업의 등록기준 중 유조차량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27960호, 2017. 3. 27.>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8508호, 2017. 12. 26.>

이 영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45호, 2018. 4.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이 영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박수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구창고 또는 공장을 갖추고 선박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박수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물류서비스업의 항만운송관련업의 세세분류란 중 “물품공급업, 선박급유업”을 “선용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으로 한다.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비고 제2호 중 “선박급유업”을 각각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한다.

③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3항제3호 중 “선박급유업자”를 “선박연료공급업자”로 한다.

④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한다.

부칙 <제30993호, 2020. 9. 8.>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80호, 2021. 1. 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391호, 2021. 1.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14호, 2021. 9. 24.>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 까지 생략

3\$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을 삭제한다.

3% 및 3^ 생략

부칙 <제32996호, 2022. 11.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용역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항만용역업을 등록한 항만운송관련사업자로서 알루미늄선을 통선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별표 6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알루미늄선의 선령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6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알루미늄선의 선령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항만용역업을 등록한 항만운송관련사업자는 별표 6 비고 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 또는 보험 가입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6 비고 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 또는 보험 가입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규정된 기간 내에 별표 6 비고 제3호 또는 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5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부칙 <제33434호, 2023. 4. 25.>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3954호,2023. 12. 12.>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9. 8.>

항만하역사업의 등록기준(제4조 관련)

| 구 분 | 사업종류
항만별 | 일반하역사업 | | | 한정하역사업 |
|--------|---|--|--|--|---|
| | 내 용 | 1 급 지 (부 산
항, 인천항,
울산항, 포항
항, 광양항) | 2 급 지 (여수항,
마산항, 동
해 · 목 호 항,
군산항, 평
택 · 당진항) | 3 급 지 (1 급
지와 2 급 지
를 제외한
항) | |
| 1. 시 설 | 시설평가액
(해양수산물부
령으로 정하
는 하역장비
의 평가액이
총시설평가액
의 3분의 2
이 상 이 어 야
한다) | 10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 1억원 이상 | 일반하역사업
의 등록기준
을 적용하되,
관리청은 이
용자, 취급화
물 또는 항만
시설의 특성
을 고려하여
그 등록기준
을 완화할 수
있다. |
| 2. 자본금 | | 2억원 이상 | 1억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 |

비 고

1. 관리청은 물동량(物動量) 감소, 항만 조건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지 항만에 대해서는 항만별로 그 사정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해당 등록기준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2.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갈음하여 재산평가액을 적용한다.
3. 관리청은 지방해양수산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보유하는 하역장비를 전용(專用)하여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용기간 동안 해양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하역장비 중 그 전용하여 사용하는 하역장비의 평가액에 해당하는 하역장비의 확보를 유예할 수 있다.
4. 해당 업종에 필요한 시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시설기준 중 급지별 최저 시설평가액의 3분의 2 이상은 본인이 소유한 것이어야 한다.
 - 가. 해당 항만하역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소유권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시설
 - 나. 해당 항만하역사업자가 1년 이상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12. 12.>

검수사업·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등록기준(제4조 관련)

| 구 분 | 점 수 사 업 | | | 감정사업 | 검량사업 |
|--------|---|-------------------|--------------------------|---------|---------|
| | 1급지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포항항, 광양항) | 2급지
(마산항, 군산항) | 3급지
(1급지와 2급지를 제외한 항) | | |
| 1. 자본금 | 5천만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
| 2. 검수사 | 가. 부산항: 40명 이상
나. 인천항: 25명 이상
다. 울산항, 포항항, 광양항: 7명 이상 | 3명 이상 | 2명 이상 | | |
| 3. 감정사 | | | | 6명 이상 | |
| 4. 검량사 | | | | | 6명 이상 |

비고: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갈음하여 재산평가액을 적용하며,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본다.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삭제 <1998.12.31>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3.3.23>

시 험 과 목 (제8조 관련)

| 구분
자격의 종류 | 시 험 과 목 |
|--------------|--|
| 검 수 사 | 1.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2. 영어 |
| 감 정 사 | 1. 전문분야의 해당 과목
2.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3.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4. 영어 |
| 검 량 사 | 1. 선박의 구조 및 홀수(吃水) 계산방법
2. 검량에 관한 일반적 지식
3. 영어 |

비고: 시험과목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3. 12. 12.>

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처분기준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사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의 기준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종합서비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임 및 요금을 인가·신고된 운임 및 요금과 다르게 받은 경우 | 법
제26조제1
항제1호,
제26조의2
제4항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나.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종합서비스업자가 법 제6조 또는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26조제1
항제2호,
제26조의2
제5항 | 사업정지
1개월 | 등록취소 | |

| | | | | |
|---|--|-------------|--|------|
| | 제4항 | | | |
| 다. 항만운송사업자·항만종합서비스업자·항만운송관련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에 규정된 죄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 법
제26조제1
항제3호,
제26조의2
제4항,
제26조의5
제1항제1호 | 사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라.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종합서비스업자의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 | 법
제26조제1
항제4호,
제26조의2
제4항 | 사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 마.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종합서비스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등록한 경우 | 법
제26조제1
항제5호,
제26조의2
제4항 | 등록취소 | | |
| 바.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종합서비스업자가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 | 법
제26조제1
항제6호,
제26조의2
제4항 | 등록취소 | | |
| 사.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 법
제26조의5
제1항제1호
의2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아.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법 제26조의3제7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26조의5
제1항제2호 | 사업정지
1개월 |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6개월
(
신고사업 | |

| | | | | |
|--|-----------------------|-------------|---|--|
| | | | 인
경우만
해당한
다) | |
| 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경우 | 법
제26조의5
제1항제3호 | 등록취소 | | |
| 차.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 | 법
제26조의5
제1항제4호 | 사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6개월
(
신고사업
인
경우만
해당한
다) | |
| 카.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사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 | 법
제26조의5
제1항제5호 | 등록취소 | | |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5의2] <신설 2023. 12. 12.>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기준(제11조의2 관련)

| 구 분 | | 1급지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포항항,
광양항) | 2급지
(여수항, 마산항,
군산항) | 3급지
(1급지와 2급지를
제외한 항) |
|-------------|--|--|---------------------------|-----------------------------|
| 1. 필수
기준 | 가. 자본금 | 1.5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1억원 이상 |
| | 나. 노동력 | 검수사업·감정사업 및 검량사업 중 수행하려는 사업에 대
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검수
사, 제3호에 따른 감정사 또는 제4호에 따른 검량사의 기준
을 갖출 것 | | |
| 2. 기타
기준 |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용역업 중 같은 호 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별표 6 제
1호에 따른 등록기준(자본금 기준은 제외한다)을 함께 갖출 것 | | | |

비고: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갈음하여 재산평가액을 적용하며,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본다.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3. 12. 12.>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제12조 관련)

| 구분 | | | 1급지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포항항, 광양항) | 2급지
(여수항, 마산항, 군산항) | 3급지
(1급지와 2급지를 제외한 항) |
|----------|------------|---|--|--|---|
| 등록
기준 | 1. 항만용역업 | 가. 자본금
나. 선박
1) 제2조제1호가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제2조제1호라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1억원 이상

통선: 20톤 이상

급수선: 50톤 이상 | 1억원 이상

통선: 10톤 이상

급수선: 10톤 이상 | 5천만원 이상

통선: 5톤 이상

급수선: 5톤 이상 |
| | 2. 선박연료공급업 | 가. 자본금
나.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장비
1) 연료공급선
(연료 공급 부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연료공급차량(유조차량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이동탱크저장소를 말한다. | 1억원 이상

총톤수 100톤 이상

탱크 용량 30킬로리터 이상 | 5천만원 이상

총톤수 30톤 이상

탱크 용량 20킬로리터 이상 | 5천만원 이상

총톤수 10톤 이상

탱크 용량 8킬로리터 이상 |

| | | | | | |
|----------|---------------------------|----------------------------|--------------------------|--------------------------|--------------------------|
| | | 이하 같다) | | | |
| | 3. 선박수리업
및 컨테이너수
리업 | 가. 자본금
나. 공구창고
또는 공장 | 5천만원 이상
총면적 30㎡
이상 | 5천만원 이상
총면적 20㎡
이상 | 5천만원 이상
총면적 20㎡
이상 |
| 신고
기준 | 선용품공급업 | 가. 자본금
나. 자동차 | 5천만원 이상
1대 이상 | 5천만원 이상
1대 이상 | 5천만원 이상
1대 이상 |

비 고

1.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같음하여 재산평가액을 적용하며,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본다.
2. 해당 업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 가. 해당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소유권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시설 등
 - 나. 해당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1년 이상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등
3. 항만용역업의 시설등의 기준 중 통선의 선령(船齡)은 목선(木船)의 경우에는 20년 이하여야 하며 강선(鋼船), 알루미늄선 및 FRP(fiber glass reinforced plastic: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선의 경우에는 25년 이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선박의 구조 및 환경 상태가 양호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할 때에는 강선, 알루미늄선 및 FRP선에 대해서만 5년의 범위에서 그 선령기준을 연장할 수 있다.
- 3의2. 항만용역업의 등록기준 중 통선 기준의 경우 각각의 통선은 여객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이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가.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이 여객의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제
 - 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외국보험회사가 여객의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손해보험
4. 항만용역업의 등록기준 중 선박 기준의 경우에는 선박의 수와 관계없이 총톤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4의2.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항만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라목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통선 또는 급수선의 등록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5.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기준 중 연료공급선 기준의 경우에는 각각의 연료공급선의 총톤수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연료공급차량 기준의 경우에는 각각의 연료공급차량의 탱크 용량을 합하여 기준의 충족여부를 판단한다.
- 5의2.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기준 중 연료공급선 기준의 경우 각각의 연료공급선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천연가스 연료를 공급하는 연료공급선의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만을 말한다) 충족하여야 한다.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연료공급선의 선체 둘레에 방충재(防衝材)를 설치할 것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유류의 방제조치에 사용되는 자재 및 약제 또는 방제장비를 비치할 것

다. 연료공급선으로 인한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전보(填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보험계약이나 그 손해의 배상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계약을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험자등과 체결할 것

5의3.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기준 중 연료공급차량 기준의 경우 각각의 연료공급차량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유류의 방제조치와 화재 소화에 사용되는 장비(천연가스 연료를 공급하는 연료공급차량의 경우에는 유류의 방제조치에 사용되는 장비는 제외한다) 등을 비치할 것

나. 연료공급차량으로 인한 유류오염과 항만 내 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천연가스 연료를 공급하는 연료공급차량의 경우에는 유류오염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제외한다)를 전보하는 보험계약이나 그 손해의 배상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계약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체결할 것

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에 사용되는 연료공급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갖출 것

라. 그 밖에 항만의 안전, 항만운영의 장애 및 항만에서의 사고 예방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6. 선박수리업 및 컨테이너수리업의 등록기준 중 공구창고 또는 공장 기준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동수와 관계없이 총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7.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시설등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이 어선에 선박의 선박연료나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경우

나. 「한국해운조합법」 제3조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이 여객선에 선박의 선박연료나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경우

다.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낙도보조항로에 여객선을 취항시킨 여객운송사업자가 자체 연료공급시설을 보유하고 해당 여객선에 선박연료를 공급하는 경우

라. 부두에 설치된 연료공급시설 또는 급수시설을 이용하여 접안된 선박에 선박의 선박연료나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경우

마. 항만의 특성상 또는 업종별 수급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통선 또는 급수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바. 두 곳 이상의 항만이 인접해 있는 경우로서 인접한 다른 항만에 등록된 장비를 활용하여 사업 수행이 가능한 경우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12.7.4>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대상자,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훈련 내용

(제16조 관련)

| 교육훈련 과정 | 교육훈련 대상자 | 교육훈련 내용 |
|---------|---|--|
| 1. 기초교육 | 항만운송사업자 등에게 신규로 고용된 사람 또는 고용되려는 사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운송의 기초이론, 화물취급 실무 및 항만하역작업의 안전관리 등 · 항만안전, 항만하역장비 등 항만하역작업에 관한 기초이론과 실습 |
| | 항만운송사업자 등에게 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직된 노동조합(이하 “항운노동조합”이라 한다)에 신규로 가입한 사람 또는 가입하려는 사람 | |
| 2. 양성교육 | 항만하역장비의 운전·조작 및 정비 등과 관련된 기능을 습득하려는 사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하역장비의 구조와 특성 · 항만하역장비의 운전·조작 및 정비 등에 관한 이론과 실습 |
| | 자동차운반전용선의 선적작업 및 야드-트레일러(yard-trailer)운전을 수행하려는 사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운반전용선의 선적작업에 관한 이론과 실습 · 컨테이너 운송을 위한 야드-트레일러 운전에 관한 이론과 실습 |
| | 항만하역작업의 현장 감독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 | · 항만하역작업의 현장 감독자로서 필요한 이론과 실습 |
| | 검수·감정·검량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고용되려는 사람 또는 역무를 제공하려는 사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화물 및 컨테이너 등의 검수·감정·검량에 관한 이론과 실습 · 항만하역작업 및 관리에 관한 이론과 실습 · 청렴 등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
| 3. 안전교육 | 항만 내 위험물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자로 배치된 사람 또는 배치될 사람 | · 위험물취급에 관한 이론과 실습 |
| | 항만하역작업의 현장 종사자 및 | · 항만하역작업의 안전관 |

| | | |
|---------|---|---|
| | 감독업무 수행자 | 리에 관한 이론과 실습 |
| 4. 연수교육 |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 사업의 종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운송사업법」, 「개항질서법」 등 항만운송 관련 법령 · 항만운영 관리자 및 현장 감독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이론 |
| | 항운노동조합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물류, 농수산물유통 및 국제유통에 관한 이론과 실습 · 항만운영의 효율화 관리 기법 · 그 밖의 항만하역작업 및 관리에 관한 이론과 실습 |
| | 컨테이너터미널 종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테이너 항만인력 개발 계획 프로그램(PDP) · 터미널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이론과 실습 |
| 5. 정보교육 | 항만운송사업자 등의 임직원, 항운노동조합원으로서 항만운영전산망의 운영 및 컴퓨터 운용능력의 습득을 원하는 사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문서 교환 등 항만운영전산망의 운영 실습 · 컴퓨터 기초이론 및 운용능력 실습 · 인터넷, 웹디자인 등에 관한 이론과 실습 · 그래픽 등 응용프로그램의 교육 및 실습 |
| 6. 특별교육 | 정부와 교육기관 등 외부기관의 위탁 등에 의하여 교육을 받게 된 사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하역장비의 운전·조작·정비 및 관리 기술 · 항만물류, 농수산물유통 및 국제유통에 관한 이론과 실습 · 그 밖의 항만 관련 기술 및 운영관리 |

비고: 각 교육훈련 과정에 따른 세부 교과과정 및 교육훈련기관은 교육훈련기관
이 각 교육과정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13.3.23>

**항만운송사업자·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해당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경비의 내용**(제17조 관련)

| 경비 부담의 주체 | 교육훈련의 대상 | 경비 부담의 방법 |
|------------------------------|--|---|
| 1. 항만하역사업자 | 항만하역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사람 | 하역 실적에 따라 경비를 부담하고, 그 방법 및 요율(料率)은 교육훈련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 2. 검수·감정·검량 사업자 및 항만운송 관련사업자 | 검수·감정·검량 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사람 | 교육기간·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 3. 개별적으로 해당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 | 항만운송사업자 등에게 고용되려고 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려는 사람 | 교육기간·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3. 4. 25.>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26조 관련)

I. 일반기준

1. 개별기준 같은 호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금액의 과징금에 다른 과징금의 2분의 1씩을 각각 더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최대 금액은 5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개별기준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과징금에 다른 과징금의 2분의 1씩을 각각 더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3. 항만의 특성, 위반행위의 성질 또는 정도를 고려하여 해당 과징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4.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가.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나.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II. 개별기준

| 위 반 사 항 | 근거 법령 | 과징금의 금액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 1.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 사업자가 법 제6조 또는 법 제26조의3제7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27조의6 | 100만원 | |
| 1의2.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가 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 법 제27조의6 | 100만원 | 500만원 |
| 2. 항만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임 및 요금을 인가·신고된 운임 및 요금과 다르게 받은 경우 | 법 제27조의6 | 100만원 | 500만원 |

| | | | |
|---|----------|-------|--|
| 2의2. 항만운송사업자·항만운송관련
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관세
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에
규정된 죄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
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 법 제27조의6 | 500만원 | |
| 3.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
사업자의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
상 없는 경우 | 법 제27조의6 | 300만원 | |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10] <개정 2023. 4. 2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스스로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마.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 | | 1차 위반 | 2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1호 | 100만원 | 200만원 |
| 나.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2호 | 150만원 | 200만원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13.] [해양수산부령 제807호, 2026. 7. 13.,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 051 - 773 - 5774, 577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운송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2조(항만운송에서 제외되는 운송)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이란 다음 각 호의 운송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1. 선박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운송
2.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폐기물의 운송
3. 탱커선 또는 어획물운반선[어업장에서부터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는 선박을 말한다]에 의한 운송

[전문개정 2009. 12. 31.]

제3조(항만의 지정) ① 법 제2조제3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지정하는 항만”이란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의 무역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② 법 제2조제3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수역(水域)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3. 24.>

[전문개정 2009. 12. 31.]

제2장 항만운송사업

제4조(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운송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7. 12. 28., 2024. 7. 1., 2025. 5. 28.>

1.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정관
2.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개정 2011. 4. 11., 2013. 3. 24., 2017. 12. 28., 2024. 7. 1., 2025. 5. 28.>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표준재무제표증명(기존의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해당 사업에 제공될 시설 및 장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박국적증서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1., 2013. 3. 24., 2017. 12. 28., 2024. 7. 1.>

1. 하역장비의 종류, 명칭, 형식, 능력, 설치장소 및 소유 또는 임차의 구별을 기재한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선박 또는 부선(浮船)의 이름, 용도, 총톤수, 적재 톤수[예인선(曳引船)과 통선(通船)은 제외한다], 주기관(主機關)의 마력 수(예인선만 해당한다), 계류장(繫留場)의 위치 및 소유 또는 임차의 구별을 기재한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선박 또는 부선을 소유한 경우에는 선적증서(船籍證書)의 사본 또는 부선증서의 사본을 말한다]
3. 사업소, 하역장 또는 수면(水面) 목재저장소의 명칭, 위치 및 소유 또는 임차의 구별을 기재한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9. 12. 31.]

제5조(사업계획)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소의 수, 명칭 및 위치
3. 사업개시 예정일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종사자(일일고용된 사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사람 및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
 - 가. 현장직원(작업을 기획하거나 화물을 인수·인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나. 현장감독자(현장에서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 다. 선내(船內) 종사자(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일에 종사하는 부두책임자, 갑판책임자 및 양하기(揚荷機) 책임자를 말한다)
 - 라. 선박의 승무원
 - 마. 부선의 승무원
 - 바. 보관직원(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13호에 따른 행위 중 화물의 보관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 건설기계 조종사

5. 사업에 제공될 시설 및 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하역장비의 종류별 대(臺) 수 및 대별 능력
- 나. 선박의 척(隻) 수 및 척별 적재 톤수
- 다. 부선의 척 수 및 척별 적재 톤수
- 라. 예인선의 척 수 및 척별 주기관의 마력 수
- 마. 통선의 척 수 및 척별 총톤수
- 바. 상옥(上屋) 및 창고의 동(棟) 수 와 동별 위치 및 면적
- 사. 하역장의 수, 위치 및 면적
- 아. 수면 목재저장소의 수, 위치 및 면적
- 자. 종사자 대기소의 위치 및 면적

6. 수행하려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7. 연간 취급화물량의 추정치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업, 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사업의 개요
- 2. 사업소의 수, 명칭 및 위치
- 3. 각 사업소별 검수사, 감정사 또는 검량사(이하 “검수사등”이라 한다)의 수
- 4. 각 사업소별 검수사등 대기소의 위치 및 면적
- 5. 연간 취급화물량의 추정치(검수사업과 검량사업만 해당한다)
- 6. 연간 취급 건수 추정치(감정사업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6조(등록증의 발급)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운송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7. 12. 28., 2024. 7. 1.>

[전문개정 2009. 12. 31.]

제7조(항만하역장비의 종류)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별표 1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하역장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 3. 24.>

[전문개정 2009. 12. 31.]

제8조 삭제 <1999. 2. 8.>

제9조(응시원서)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검수사등 자격시험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0조(검수사등의 등록)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검수사등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검수사등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한국검수검정협회의 장(이하 “한국검수검정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
2. 검수사등 자격증 사본
3. 사진(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② 한국검수검정협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수사등의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수사등 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한국검수검정협회장은 제2항에 따라 검수사등 수첩을 발급할 때에는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과 법인의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검수사등의 구분
3. 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
4. 취업하려는 항만 및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만운송사업자”라 한다)의 명칭

[전문개정 2009. 12. 31.]

제11조 삭제 <1999. 2. 8.>

제12조 삭제 <1999. 2. 8.>

제13조(검수사등의 자격증) 영 제10조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3조의2(자격취소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자격이 취소되는 검수사등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취소되는 자격의 종류
3. 자격취소 사유

[본조신설 2013. 7. 24.]

제14조 삭제 <1999. 2. 8.>

제15조(운임 및 요금) ①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의 설정 또는 변경의 인가신청이나 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인가(변경인가) 신청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신고(변경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8., 2017. 12. 28.>

② 제1항에 따른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인가(변경인가) 신청서 또는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신고(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1., 2012. 11. 28.>

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와 화물별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에 관한 서류
2. 사업의 수입·지출 예산서
3. 운임 및 요금의 신·구 대조표(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검수사업·감정사업 또는 검량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요금의 설정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4., 2017. 12. 28., 2020. 4. 6.>

1. 상호
2. 성명 및 주소
3. 사업의 종류
4. 취급화물의 종류
5. 항만명(검수사업만 해당한다)
6. 변경 전후의 요금 비교, 변경 사유와 변경 예정일(요금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요금의 적용방법

[전문개정 2009. 12. 31.]

제15조의2(운임 및 요금의 신고) 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시설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사가 고시한 항만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2017. 12. 28., 2020. 7. 30.>

1. 특정 화물주(貨物主)의 화물만을 취급하는 항만시설
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비관리청이나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7조제1항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항만시설

② 법 제10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해당하는 화물”이란 컨테이너 전용 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을 말한다.<개정 2013. 3. 24.>

[전문개정 2009. 12. 31.]

제16조 삭제 <1999. 6. 24.>

제17조 삭제 <1999. 6. 24.>

제18조 삭제 <1999. 6. 24.>

제19조 삭제 <1999. 6. 24.>

제20조 삭제 <1999. 6. 24.>

제21조 삭제 <1999. 6. 24.>

제22조 삭제 <1999. 6. 24.>

제23조 삭제 <1999. 6. 24.>

제24조 삭제 <1999. 2. 8.>

제25조(행정처분 결과의 보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6조 또는 제26조의 5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7. 12. 28.>

[전문개정 2009. 12. 31.]

제25조의2(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신청 등) ①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종사자의 현황
3. 보유 시설 및 장비의 목록과 현황
4. 사업개시 예정일

④ 제1항에 따라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중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오물을 제거하거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내용의 사업을 포함하여 수행하려는 자는 제26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⑤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신청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1.]

제3장 항만운송관련사업

제26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①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선용품공급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물품공급업은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18. 5. 1.>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삭제 <2018. 5. 1.>
3.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
4. 부두시설 등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만시설의 사용허가서 사본(선박수리업 및 컨테이너수리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의 경우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1., 2017. 12. 28., 2024. 7. 1.>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1. 사업의 개요
2. 종사자의 현황
3. 보유 시설 및 장비의 목록과 현황
4. 사업개시 예정일

④ 제1항에 따라 항만용역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중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오물을 제거하거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하수도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허가받은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바다 위에서 분뇨나 폐기물을 운반하기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

⑤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또는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영 별표 6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선용품공급업 신고확인증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증을 발급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장비의 명세를 확인하는 서류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2018. 5. 1., 2024. 7. 1.>

⑥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가 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 변경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

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28., 2018. 5. 1.>

⑦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영 별표 6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하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 변경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28., 2018. 5. 1.>

[전문개정 2009. 12. 31.]

제4장 부두운영회사의 운영 등 <신설 2017. 12. 28.>

제27조(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 ① 법 제26조의6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0. 7. 30.>

1. 법 제26조의6제2항제3호에 따른 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및 그 밖에 부두운영회사가 「항만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시설운영자등”이라 한다)에 내야 하는 비용의 지급 능력
2. 화물의 유치 능력 및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부두운영계약(이하 “부두운영계약”이라 한다)으로 임차·사용하려는 항만시설 및 그 밖의 장비·부대시설 등(이하 “항만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 능력

3. 재무구조의 건전성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항만시설운영자등이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2. 28.]

제28조(항만시설등의 임대료) 법 제26조의6제2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7. 12. 28.]

제29조(부두운영계약의 내용) 법 제26조의6제2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등의 분할 운영 금지 등 금지행위 및 위반시 책임에 관한 사항
3. 항만시설등의 효율적인 사용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항만시설운영자등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한 사항

[본조신설 2017. 12. 28.]

제29조의2(부두운영회사의 선정 절차) ① 항만시설운영자등이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두운영회사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항만시설을 개장(開場)하기 6개월 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계약 대상 항만시설등

2. 계약기간 및 임대료

3. 계약 참여 방법

4. 제27조에 따른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

②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등의 효율적인 사용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고기간을 줄이거나 공고 없이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항만시설운영자등은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③ 항만시설운영자등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제27조에 따른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2. 28.]

제29조의3(부두운영계약의 갱신) ① 부두운영회사가 법 제26조의6제2항제4호에 따른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항만시설운영자등에게 부두운영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회사로부터 부두운영계약의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임대료의 연체 여부

2. 법 제26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의 이행 여부

3. 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등의 분할 운영 여부 등 금지행위 위반 여부

4. 그 밖의 부두운영계약의 이행 여부

③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부두운영계약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갱신계약기간이 시작되기 7일 전까지 해당 부두운영회사와 갱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3항에 따라 갱신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제27조에 따른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2. 28.]

제29조의4(위약금의 부과) ① 법 제26조의7제1항 본문에 따른 위약금(이하 “위약금”이라 한다)은 부두운영회사가 부두운영계약 기간 동안의 총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부과한다. 이 경우 위약금은 별표 4에 따라 연도별로 산정하여 합산한다. <개정 2020. 3. 13.>

②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운영자등은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개정 2020. 3. 13.>

1. 정부의 항만 개발에 관한 계획 등이 미이행되거나 연기되어 부두운영회사가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두운영회사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하다고 항만시설운영자등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7. 12. 28.]

제29조의5(부두운영계약의 해지) 법 제26조의9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두운영회사가 부두운영계약 기간 동안 자기의 귀책사유로 법 제26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2. 부두운영회사가 제29조제2호에 따른 항만시설등의 분할 운영 금지 등 금지행위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부두운영회사가 제29조제3호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7. 12. 28.]

제5장 보칙

제30조(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①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영업개시 3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8.>

[전문개정 2009. 12. 31.]

제30조의2(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법 제27조의3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 3. 13.>

1. 법 제3조제1호의 항만하역사업
2. 영 제2조제1호나목 중 줄잡이 항만용역업
3. 영 제2조제1호다목 중 화물 고정 항만용역업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받아야 한다.<개정 2020. 3. 13.>

1. 신규자 교육훈련: 제1항에 따른 작업에 채용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
2. 재직자 교육훈련: 제1호의 교육훈련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및 그 후 매 2년마다 실시하는 교육훈련

③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의 내용·방법·시간 및 교육훈련의 유효기간은 별표 5와 같다.

④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은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에게 교육훈련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27조의3제2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제1항의 작업을 말한다.

⑥ 법 제27조의3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교육훈련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 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귀책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
- [본조신설 2017. 12. 28.]

제31조(교육훈련기관의 설립) ①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영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7. 1. 2., 2017. 12. 28.>

1. 설립취지서
2. 정관
3. 설립자의 성명, 주소 및 약력(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정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을 기재한 서류
4.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5. 재산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의4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설립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 2., 2017. 12. 28.>

[전문개정 2009. 12. 31.]

제32조 삭제 <1999. 6. 24.>

제33조 삭제 <1999. 6. 24.>

제34조(수수료) ① 법 제28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1. 28.>

1. 법 제4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1만원
2. 법 제7조에 따른 검수사등의 등록: 5천원
3. 법 제7조에 따른 검수사등 자격시험의 응시: 2만원
4. 법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 1만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영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한국검수검정협회가 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현금으로 내야하며, 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한국검수검정협회의 수입으로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한국검수검정협회는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4., 2017. 12. 28.>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검수사등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2. 6. 11.>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액
2. 원서 접수기간에 원서접수를 취소한 경우: 낸 수수료 전액
3.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낸 수수료 전액
4. 원서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낸 수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5. 시험 시행일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낸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09. 12. 31.]

제35조(위탁 업무의 보고) 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또는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1. 시험 일시 및 장소, 시험위원 위촉기준, 시험의 출제 범위 및 문제 수, 시험시간, 합격자 결정기준 등 시험의 실시에 관한 계획
2. 시험공고에 관한 사항
3.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하였을 때에는 응시자 현황
4. 최종 합격자의 인적사항 등 시험실시 결과에 관한 사항

② 한국검수검정협회가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검수사등 등록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별로 종합하여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4.>

1. 검수사등의 총 등록현황
2. 검수사등의 항만 및 업체별 등록현황
3. 검수사등의 항만 및 업체별 신규·변경 등록현황

③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 영 제27조제5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28.>

1. 교육훈련의 기간, 교육과정 및 내용 등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 이수증의 발급 현황

[전문개정 2009. 12. 31.]

제36조 삭제 <2026. 7. 13.>**부칙** <제38호,1997. 12. 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증의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항만운송사업면허증 및 항만운송부대사업허가증에 대하여는 그 발급기관이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항만운송사업등록증 및 항만운송관련사업등록증으로 바꾸어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97호,1999. 2.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호,1999. 6.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호,2003. 11.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호,2004. 8. 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항질서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호,2006. 6. 26.> (행정정보 공유 및 문서감축을 위한 「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호,2007. 10. 1.> (하수도법 시행규칙)**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제1호 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하수도법」”으로 한다.

⑧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401호, 2008. 1. 18.>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항만운송사업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을 삭제한다.

⑦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4호, 2008. 3. 14.>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호, 2008. 9.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호, 2009. 3. 26.>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호, 2009. 12.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응시수수료 환불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0호, 2011. 4. 1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3호, 2012. 6. 11.> (행정처리기간 단축 및 수수료 합리화 등을 위한 개항
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
34조제4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검수사·감정사·
검량사의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제538호, 2012. 11.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공고되는 검수
사등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호, 2013. 3. 24.>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제2항, 제7조 및 제15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6조
,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3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및 별
지 제8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57>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35호, 2013. 7.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호,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호, 2014. 6. 2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호, 2014. 12. 31.> (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호, 2017. 1. 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70호, 2017. 12.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0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작업에 채용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30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2018년 12월 28일까지 제30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283호, 2018. 5.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7호, 2020. 3.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약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부두운영계약 기간 중에 있는 부두운영회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화물 고정 항만용역업 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30조의 2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 고정 항만용역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3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최초의 재직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4조(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재직자 교육훈련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재직자 교육훈련의 유효기간은 제30조의2제2항제2호 및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부칙 <제402호, 2020. 4. 6.>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0호, 2020. 7. 30.> (항만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2호 중 “항만공사”를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항만법」 제30조제1항 본문”을 “「항만법」 제41조제1항제1호”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3호 중 “「항만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을 “「항만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486호, 2021. 6. 3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5호,2021. 11.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8호,2024.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5호,2025. 5.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7호,2026. 7. 13.>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
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09.12.31>

수역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제3조제2항 관련)

| 위 치 | 항 만 명 | 수 역 |
|------|-------|--|
| 전라남도 | 노화도항 | 북위 34도14분03초·동경 126도34분03초 지점에서 마삭도 남단을 이은 선과, 마삭도 남단에서 횡간도 서남단 북위 34도14분07초·동경 126도35분33초의 지점과 북위 34도13분37초·동경 126도35분38초의 지점을 차례로 이은 선 안의 해면 |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11. 5.>

항만하역장비의 종류(제7조 관련)

1. 예인선 및 부선
2. 기중기 및 기중기선
3. 언로더(Unloader) 및 십 로더(Ship loader)
4. 지게차
5. 페이로더(Payloader)
6. 포크레인
7. 불도저
8.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9. 컨베이어 벨트(Conveyor Belt)
10. 트럭
11. 트랙터 및 트레일러
12. 사일로(Silo)
13. 굴착기
14. 스택커 리클레이머(Stacker Reclaimer)
15. 크레인(Crane)
16. 야드-샴시(Yard-Chassis)
17. 고무 방충재(防衝材) 등 해상 환적용(海上 換積用) 장비
18. 그 밖에 항만에서 하역 작업을 위하여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5. 5. 28.>

항만시설등의 임대료(제28조 관련)

| 구분 | 산출식 |
|---------------------|--|
| 1. 안벽(부두 벽) 임대료 | 표준안벽가액 × 임대안벽 면적(㎡) × 부과율(5%)
× 부두별 조정률 |
| 2. 창고 및 야적장 임대료 | 항만시설 사용료율 × 누적생산자물가상승률 |
| 3. 통로 임대료 | 항만시설 사용료율(야적장 임대료) × 50/100 |
| 4. 토지·건물 등 부대시설 임대료 | 해당 부대시설의 재산가액 × 사용료율 |

비고

- 제1호의 표준안벽가액과 부두별 조정률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항만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표준안벽가액과 부두별 조정률을 변경하려면 직전의 고시일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한다.
-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신규로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한 부두운영회사에 대하여 제1호의 안벽 임대료를 최초 3년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1차년도에는 70%의 범위에서, 2차년도에는 50%의 범위에서, 3차년도에는 30%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 제2호 및 제3호의 항만시설 사용료율은 「항만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것을 말하고, 제2호의 누적생산자물가상승률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한다.
- 제4호의 재산가액 및 사용료율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다.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0. 3. 13.>

연도별 위약금 산정 방법(제29조의4 관련)

| 구분 | 연도별 위약금 산정 방법 |
|----------------|--|
| 1. 화물유치 계획 미이행 | 해당 연도 임대료 × [(연차별 화물유치 계획물량-연차별 실제 처리물량)/연차별 화물유치 계획물량] × 요율 |
| 2. 투자 계획 미이행 | 해당 연도 임대료 × [(연차별 투자계획 누적금액-실제 투자 누적금액)/연차별 투자계획 누적금액] |

비고

제1호의 요율은 최초 2년간은 할인차등요율(1년차는 50%, 2년차는 70%를 말한다)을 적용하며, 3년차부터는 100%를 적용한다.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0. 3. 13.>

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제30조의2제3항 관련)

| 구분 | 교육훈련의 내용 | 교육훈련
방법 및
시간 | 교육훈련
유효기간 |
|-------------|--|--|--------------|
| 1. 신규자 교육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별 특성과 위험에 관한 사항 · 항만하역 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물의 취급요령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화물별 사고사례와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응급처치 등 관련 실습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항만 안전에 관한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 및 실습 · 12시간 이상 | |
| 2. 재직자 교육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 복장에 관한 사항 · 장비와 도구의 안전에 관한 사항 · 화물별 위험에 관한 사항 · 화물별 안전작업 요령에 관한 사항 · 화물별 사고사례와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 위험물의 취급요령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응급처치 등 관련 실습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항만 안전에 관한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 및 실습 · 2시간 이상 | 2년 |

비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호의 신규자 교육훈련 또는 제2호의 재직자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5. 28.>

(앞 쪽)

| | | | | |
|--|-------------|------------------------------------|--|-------------|
| 항만운송사업등록신청서 | | | | 처리기간
5일 |
| 신청인 | ①상 호(명 칭) | | | |
| | ②대 표 자(성 명) | | ③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 | ④주 소 | (전화번호:) | | |
| ⑤사 업 의 종 류 | | | | |
| ⑥자 본 금 | | | | |
| ⑦항 만 명(사 업 구 역) | | | | |
| ⑧이용자의 범위, 취급화물
의 종류 또는 이용항만시설(한정하역사업에 한함) | | | | |
| 「항만운송사업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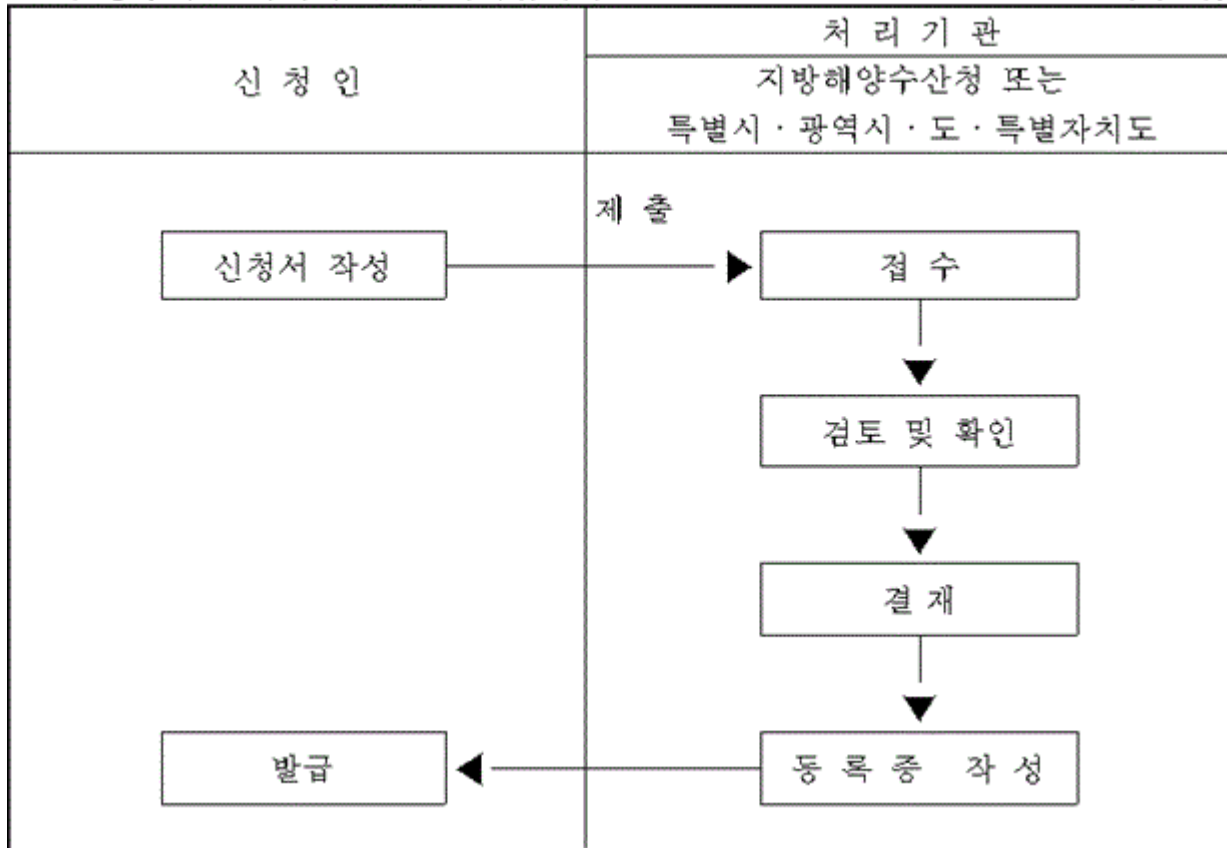
신청인 (인) | | | | |
|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 | | | |
| 구비서류 | 구 분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 | 수 수 료 |
| | 법인인 경우 |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1부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표준재무제표증명(기존의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
다) | 수입인지
1만원 |
| | 개인인 경우 | 1. 사업계획서 1부
2.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 1부 | 주민등록표 초본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m'(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5. 28.>

등록번호 제 호

항만운송사업 등록증

상호(명칭):

대표자(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의 종류:

등록 연월일:

항만명(사업구역):

이용자의 범위, 취급화물의 종류 또는 이용 항만시설(한정하역사업만 해당함)
:

유의사항:

「항만운송사업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운송사업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인

시·도지사 인

53337-38611일

97.6.27. 승인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11.28>

검수사등 자격시험 응시원서(원본)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 | | |
|---|--|--------|--|
| 성 명 | (한글) | 주민등록번호 | 감독관 |
| | (한자) | | 시험일 |
| 주 소 | | | 전화번호 |
| 최종 출신학교 | 학교 과 년도(졸업·수료) | | 사 진
3cm × 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 응시 구분 | ☐ 검수사 ☐ 감정사 ☐ 검량사 | | |
| 수수료 | 응시번호 | | |
| 2만원 | | | |
| 본인은 년도 제 회 검수사·감정사·검량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 | | |

| | | | |
|-------------------|-------------|------|--|
| 응 시 표 | | | 사 진
3cm × 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 년도 () 사) 자격시험 | | | |
| 응시번호 | 성 명 | (한글) | |
| 응시 구분 | | (한자) | |
| 접수지역 | 주민등록
번 호 | ~ | |
| | | | 년 월 일 |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 | 직인 |

210mm × 297mm (백상지 120g/㎡)

응시자 유의 사항

1. 시험 시작 20분 전에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 응시표와 주민등록증을 책상 위에 놓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필기구는 컴퓨터용 검은색 수성사인펜을 사용해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1. 2.>

(앞 쪽)

| | | | | |
|---|-------|--|-------------------|------|
| 검수사등 등록신청서 | | | | 처리기간 |
| | | | | 3일 |
| 신청인 | ① 성 명 | (한글)
(한자) | ② 생년월일 | |
|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④ 종 류 | | ☐ 검수사 ☐ 감정사 ☐ 검량사 | | |
| ⑤ 취업하려는 항만운송사업자의 명칭 | | | ⑥ 항 만 명
(사업구역) | |
| <p>「항만운송사업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수사·감정사·검량사의 등록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한국검수검정협회장 귀하</p> | | | | |
|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사본 1부
2. 검수사등 자격증 사본 1부
3. 사진(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합판) 2장 | | | | 수수료 |
| | | | | 5천원 |

53337-07311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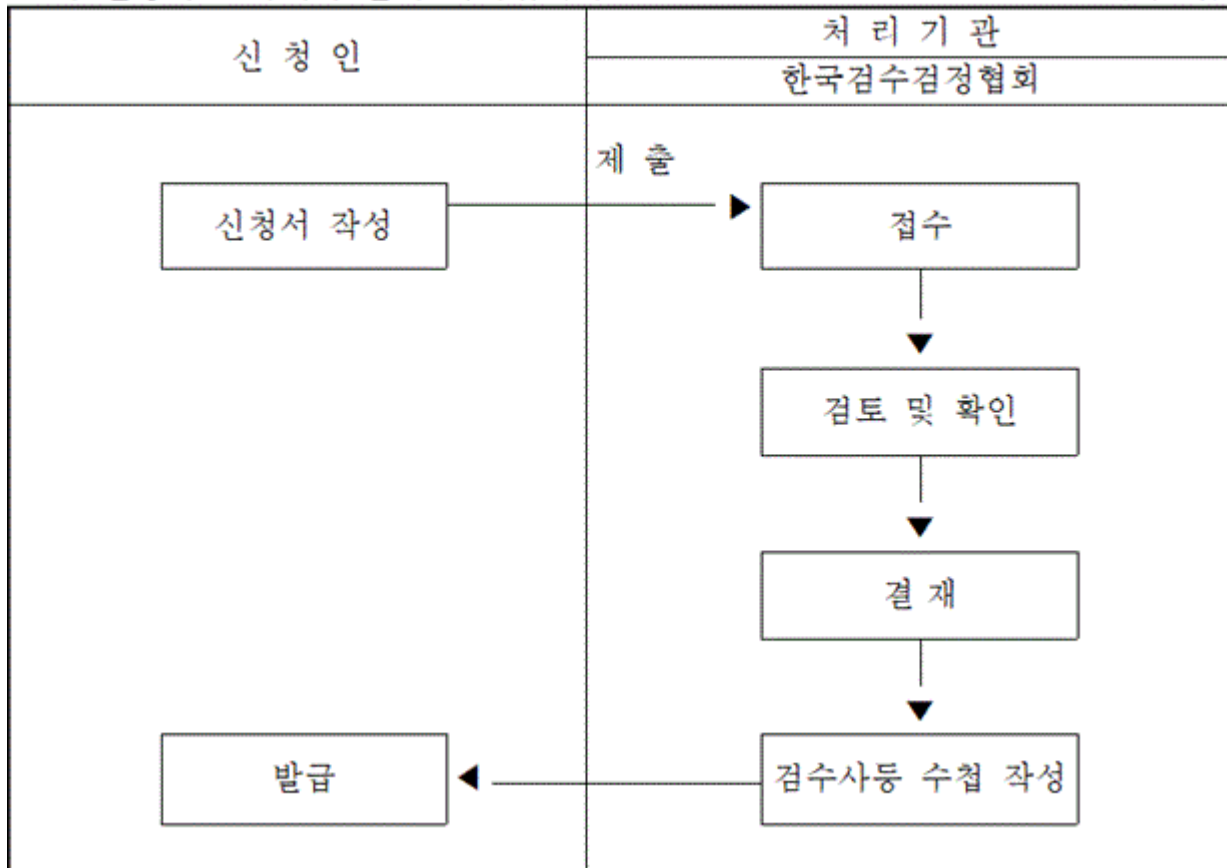
210mm×297mm

97.6.27. 승인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9.12.31>

검수사·감정사·검량사 수첩

(1 쪽)

대한민국
검수사 수첩
감정사 수첩
검량사 수첩

TALLYMAN CERTIFICATE
SURVEYOR CERTIFICATE
MEASURER CERTIFICATE
OF
REPUBLIC OF KOREA

53337-10811일
97.6.27. 승인

95mm×155mm
(보존용지(1종)
120g/m²)

(2 쪽)

제 호

성명:

년 월 일 발급

검수사 수첩

감정사 수첩

검량사 수첩

한국검수검정협회장

(3 쪽)

사진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서명(SIGN)

(4 쪽)

| | |
|--------------------------|--|
| 성명
NAME | |
| | |
| 주소
PRESENT
ADDRESS | |
| | |
| 생년월일
DATE OF
BIRTH | |
| | |

(5 쪽)

항만운송사업자명(소속):

항만명:

년 월 일

한국검수검정협회장 

항만운송사업자명(소속):

항만명:

년 월 일

한국검수검정협회장 

항만운송사업자명(소속):

항만명:

년 월 일

한국검수검정협회장 

[서식 6] 삭제 <1999.2.8>

[서식 7] 삭제 <1999.2.8>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5. 28.>

제 호

○○○ 자격증 (○○○ Certificate)

성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시험 합격일:

Qualifying Examination Pass Date:

「항만운송사업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by the law of 「HARBOR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7(1) and 「ENFORCEMENT DECREE OF THE
HARBOR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10.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5. 28.>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인가(변경인가) 신청서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60일 |
| 신청인 | 상 호(명칭) | 하역업 등록일 | |
|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인가신청
내 용 | 항만명: | 인가 신청의 종류 | |
| | 시설명(한정하역에 한함): | [] 신규인가 [] 변경인가 | |
| | 화물명: | 운임 및 요금
[] 정부 인가요율표를 따름 [] 별도의 운임 및 요금을 신청 | |
| 변경사유 | | | |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의 인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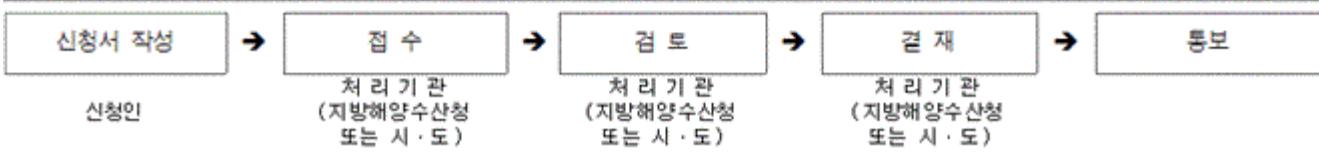
지방해양수산청장(시·도지사)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와 화물별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에 관한 서류 1부
2. 사업의 수입·지출 예산서 1부
3. 운임 및 요금의 신·구 대표표(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 수수료
없 음 |
|------|---|------------|

작성 방법

1. 화물명란의 작성은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 주된 화물(물량기준)만 작성하고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같습니다.
2. 운임 및 요금란에서 별도의 운임 및 요금을 신청하는 경우(별도 인가신청을 하는 경우나 변경인가신청 경우를 의미함)에는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같습니다.
3. 변경사유란은 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5. 28.>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신고(변경신고)서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0일 |
| 신고인 | 상 호(명칭) | 하역업 등록일 | |
|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신고내용 | 항만명: | 신고의 종류
[] 신규신고 [] 변경신고 | |
| | 화물명: | 운임 및 요금 | |
| 변경사유 | | | |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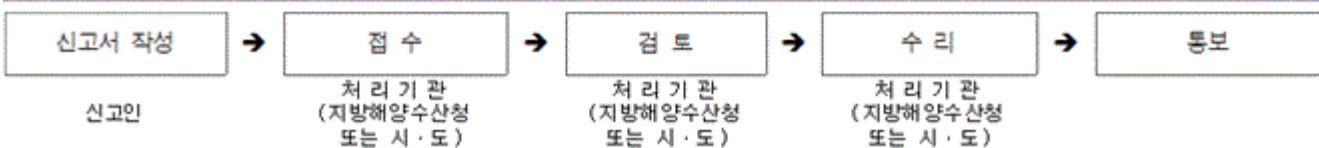
지방해양수산청장(시·도지사)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와 화물별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에 관한 서류 1부
2. 사업의 수입·지출 예산서 1부
3. 운임 및 요금의 신·구 대표표(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 수수료
없음 |
|------|---|-----------|

작성 방법

1. 화물명란의 작성은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 주된 화물(물량기준)만 작성하고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같습니다.
2. 운임 및 요금란에는 취급화물이 1가지인 경우 기본요금만 작성하고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같음하고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같음” 이라 표시하고 첨부서류 1로 같습니다.
3. 변경사유란은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24. 7. 1.>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6일 |
| 신청인 | 상호(명칭) | |
| |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소재지) | |
| | (전화번호:) | |
| 사업의 종류
(모두표기) | ☐ 검수사업 | ☐ 감정사업 |
| | ☐ 검량사업 | ☐ 항만용역업(화물 고정) |
| | ☐ 항만용역업(줄잡이) | ☐ 항만용역업(선박 경비) |
| | ☐ 항만용역업(통선) | ☐ 항만용역업(오물 제거) |
| | ☐ 항만용역업(선박 청소) | ☐ 항만용역업(폐기물 수집·운반) |
| | ☐ 항만용역업(선박 소독) | ☐ 항만용역업(맑은 물 공급) |
| | ☐ 항만용역업(선박 칠) | ☐ 기타 |
| | 자본금 | |
| 항만명(사업구역) | | |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 종합서비스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시·도지사

| | |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할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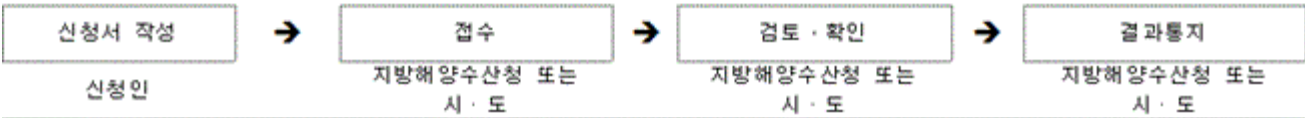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할 중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24. 7. 1.>

등록번호 제 호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증

1. 상호(명칭):
2. 대표자(성명):
3. 소재지:
4. 사업의 종류:
5. 등록 연월일:
6. 항만명(사업구역):
7. 유의사항: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직인

[서식 13] 삭제 <1999.6.24>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5. 5.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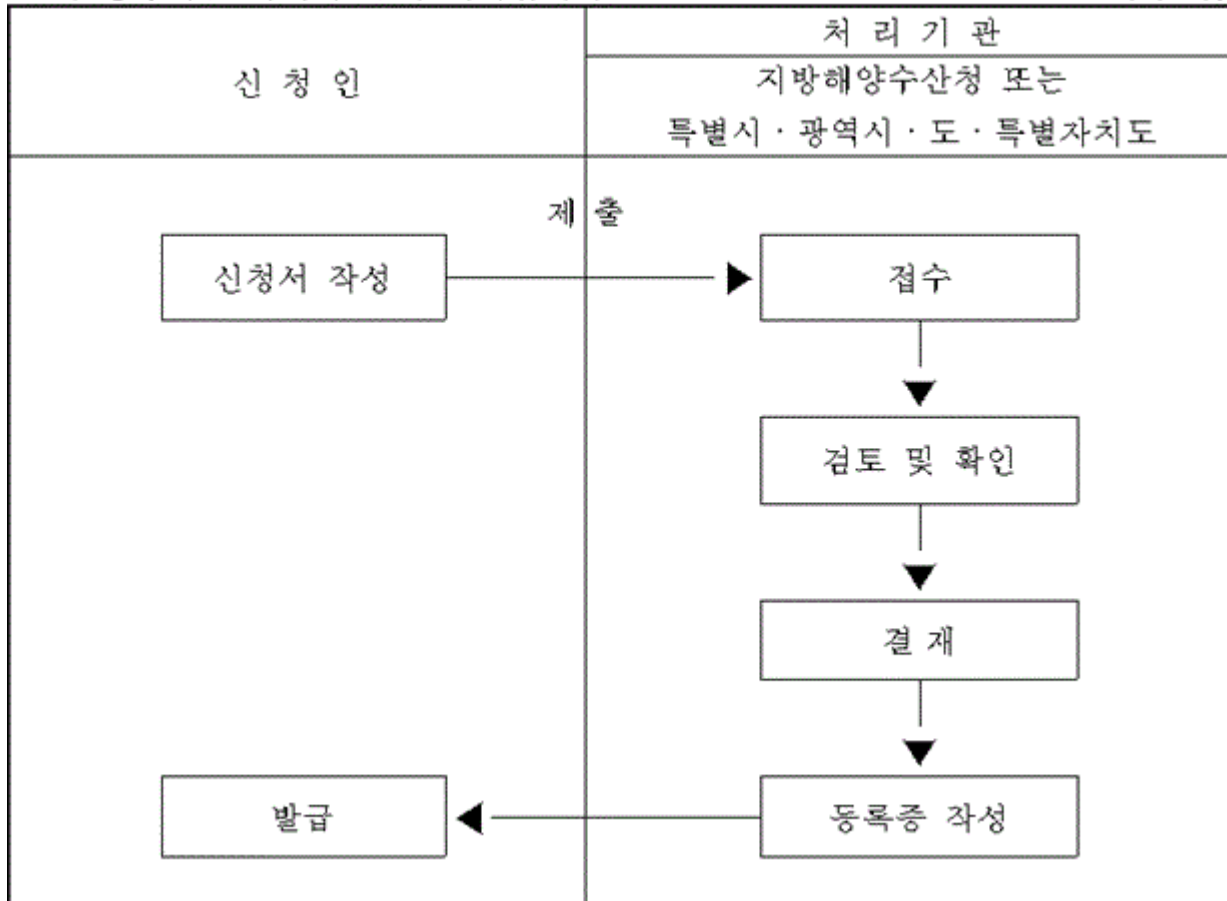
(앞 쪽)

| | | | |
|---|---|--|--|
|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선박연료공급업·선박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등록신청서 | | | 처리기간
<div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6일</div> |
| 신청인 | ①상 호(명 칭) | | |
| | ②대 표 자(성 명) | ③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 | ④주 소 | (전화번호:) | |
| ⑤사 업 의 종 류 | | | |
| ⑥자 본 금 | | | |
| ⑦항 만 명(사 업 구 역) | | | |
|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선박연료공급업·선박수리업·컨테이너수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
| <div style="margin-right: 50px;">년 월 일</div> <div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인)</div> | | | |
| <div style="text-align: center;">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div> <div style="text-align: center;">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div> | | | |
| 구비서류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 | 수수료 |
| |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 1부
4. 부두시설 등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만시설의 사용허가서 사본(선박수리업 및 컨테이너수리업만 해당합니다) 1부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입인지
1만원 |
|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p> | | | |
| <div style="margin-right: 50px;">신청인(대표자)</div> <div style="text-align: right;">(서명 또는 인)</div> |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m'(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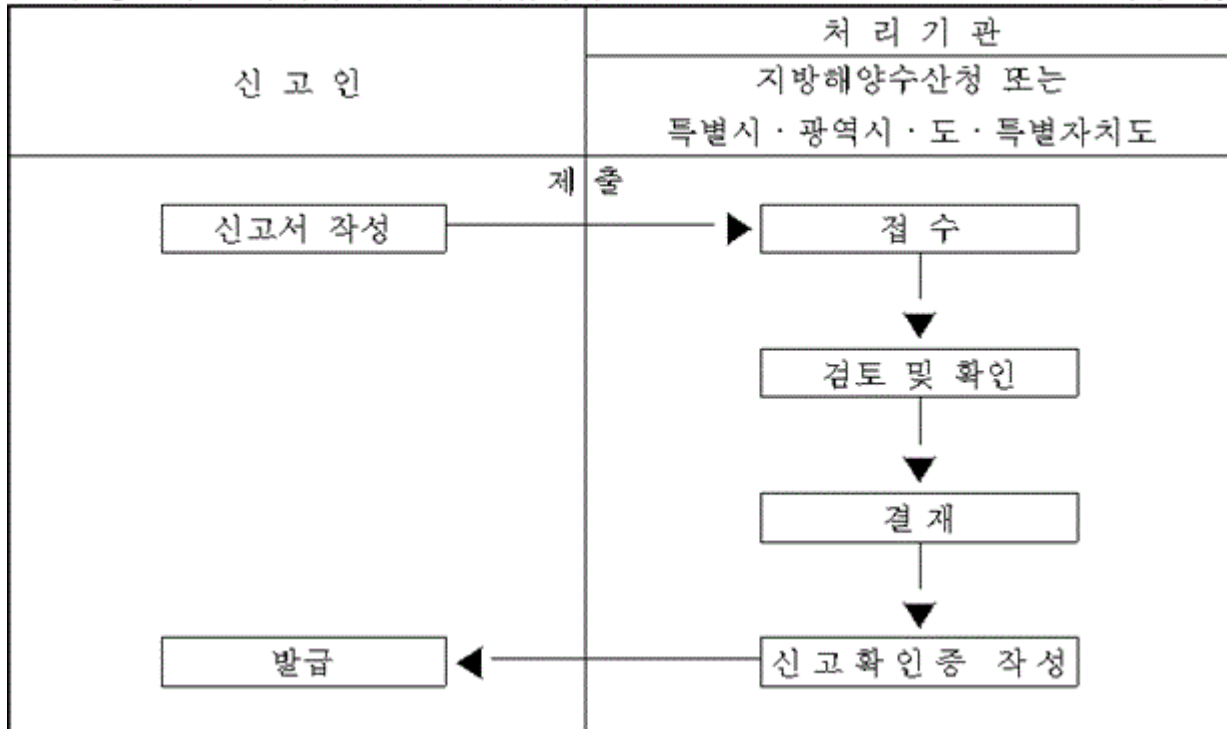
(뒤 쪽)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5. 5. 28.>

등록번호 제 호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선박연료공급업·선박수리업·컨테이너수리업)
등록증

상호(명칭):

대표자(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의 종류:

등록 연월일:

항만명(사업구역):

유의사항: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5
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인

시·도지사 인

53337-44111일

97.6.27. 승인

210mm×297mm

(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5. 5. 28.>

신고번호 제 호

선용품공급업 신고확인증

상호(명칭):

대표자(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신고 연월일:

항만명(사업구역):

유의사항: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용품공급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인

시·도지사 인

53337-48211일

99.6.14. 승인

210mm×297mm

(보존용지(1종)120g/m²)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개정 2018. 5. 1.>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
| 신고인 | 상호명/선박연료공급업 등록번호 | | 등록 항만명 | | |
| |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 |
| | 주소
(전화번호:) | | | | |
| 장비추가
(선박/차량) | 선명(차량번호) | 톤수(적재량) | 진수(進水)연월일
(제조일) |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 여부 | 소유 형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경 사유 | | | | | |
| 장비 상세 | 사업계획서 참조 | | | | |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6항에 따라 선박연료 공급업 사업계획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시·도지사

| | | |
|------|----------|-----------|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 | | | | |
|----------------------|---|-----|---|----|---|----|---|---------------|
| 신고서 작성
신고인 | → | 접 수 | → | 검토 | → | 결재 | → | 변경신고확인증
발급 |
| 처리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 | | | | | | | |

210mm × 297mm [백상지 (80g/㎡)]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3서식] <개정 2024. 7. 1.>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 변경신고확인증

| | | | | | |
|-------|------------------------|---------|---------------------|--------------------|-------|
| 신고인 | 상호명/선박연료공급업 등록번호 | | 등록 항만명 | | |
| |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 |
| |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 | | | |
| 장비 상세 | 선명(차량번호) | 톤수(적재량) | 진수(進水)연월일
(제조일) |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 여부 | 소유 형태 |
| 변경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경 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7항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의 변경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직인

[서식 17] 삭제 <1999.6.24>

(앞 쪽)

| | | | | | | | |
|--|--------------------|--|--|---------------------|------------|------------|--|
|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 | | | | | | 처리기간
3일 | |
| | | | | | | | |
| ① 신고번호: 호 | | | | | | | |
| 신고인 | ② 상호(명칭) | | | ③ 전화번호 | | | |
| | ④ 대표자(성명) | | | ⑤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 |
| | ⑥ 주소 | | | | | | |
| | ⑦ 등록 항만명 | | | | | | |
| 신고내용 | ⑧ 일시적 영업행위를 하려는 항만 | | | | ⑨ 일시적 영업기간 | | |
| | ⑩ 일시적 영업행위를 하려는 사유 | | | | | | |
|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미등록 항만에서 일시적 영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월일 </div> <div style="float: right; width: 20%;"> 신고인 (인) </div> <div style="clear: both;"></div>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시·도지사 | | | | | | | |
|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1부 | | | | | | 수수료 | |
| | | | | | | 없음 | |

(자르는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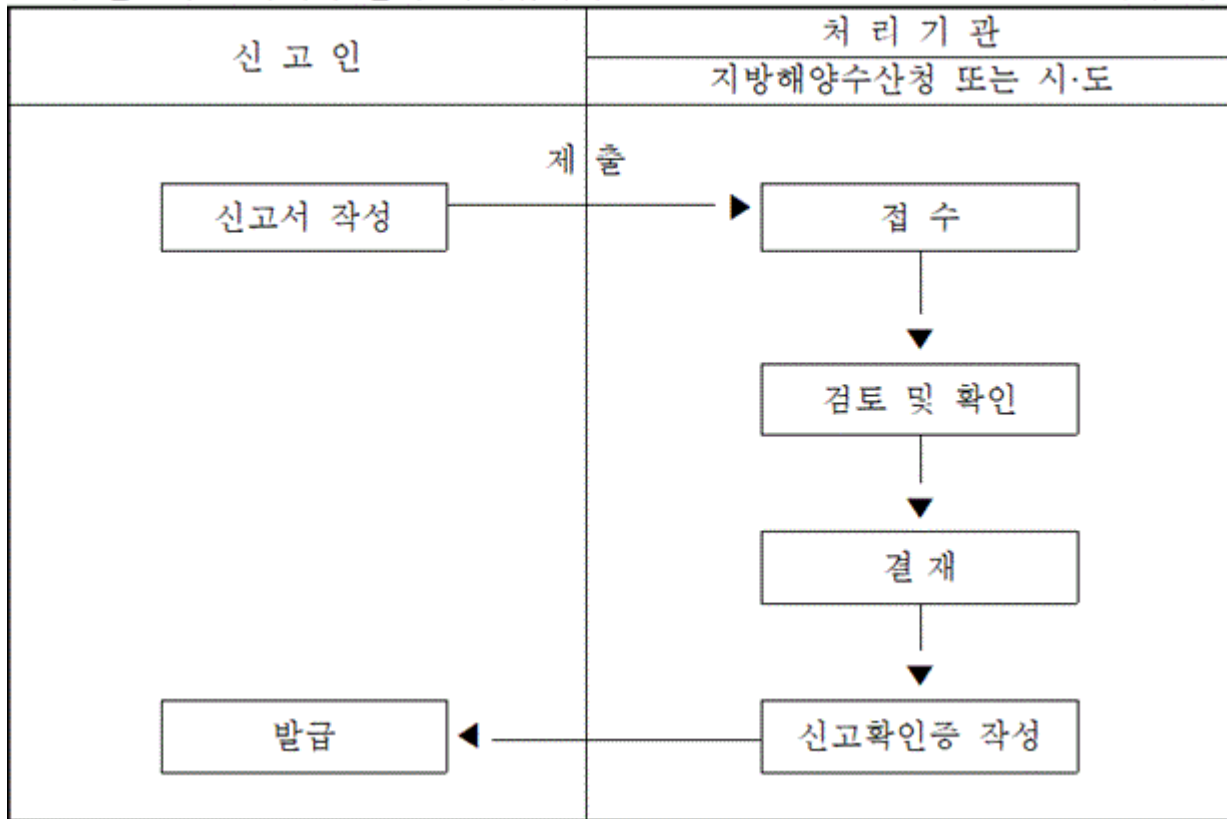
| | |
|---|------|
|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확인증 | |
| 신고번호: | 신고인: |
|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미등록 항만(항)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 | |
|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div> | |
| 지방해양수산청장 인
시·도지사 인 | |

53337-43111민
97.6.27.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7. 12. 28.>

교육훈련기관 설립인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0일 |
| 교육훈련기관명 |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교육훈련기관의 장 | | | |
| 교육과정 | 직 종 | 정 원 | 교육기간 |
| | | | 년 월(실습 월) |
| | | | 년 월(실습 월) |
| | | | 년 월(실습 월) |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하고자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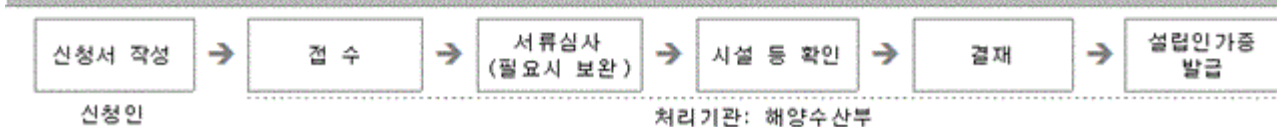
교육훈련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1부
3. 설립자의 성명, 주소 및 약력(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정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을 기재한 서류 1부
4.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5. 재산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교육훈련기관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7. 12. 28.>

인가번호 제 호

교육훈련기관 설립인가증

명 칭 :

대표자 성명:

주 소 :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 설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210mm × 297mm [백상지 (150g/m²)]



항만법

[시행 2026. 2. 27.] [법률 제21415호, 2026. 2. 27.,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 - 항만시설의 사용) 051 - 773 - 5775, 5781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 운영) 051 - 773 - 5755, 5756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 항만제도 일반) 051 - 773 - 5920, 5921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051 - 773 - 596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의 지정·개발·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2. 18., 2022. 1. 4., 2023. 10. 24.>

1.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2. “무역항”이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利害)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을 말한다.
3. “연안항”이란 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을 말한다.
4. “항만구역”이란 항만의 수상구역과 육상구역을 말한다.
5.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시설이 항만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 가. 기본시설
 - 1) 항로, 정박지, 소형선 정박지, 선회장(旋回場) 등 수역시설(水域施設)
 - 2) 방파제, 방사제(防砂堤), 파제제(波除堤), 방조제, 도류제(導流堤), 갑문, 호안(海안보호 독을 말한다) 등 외곽시설
 - 3) 도로, 교량, 철도, 궤도, 운하 등 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
 - 4) 안벽, 소형선 부두, 잔교(棧橋: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 형태로 만든 구조물), 부잔교(浮棧橋: 선박을 매어두거나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 돌핀(계선말뚝을 말한다), 선착장, 램프(경사식 진출입로를 말한다) 등 계류시설(繫留施設)

나. 기능시설

- 1) 선박의 입항·출항을 위한 항로표지·신호·조명·항무통신(港務通信)에 관련된 시설 등 항행 보조시설
- 2)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화물 이송시설, 배관시설 등 하역시설
- 3) 대기실, 여객승강용 시설, 소하물 취급소 등 여객이용시설
- 4) 창고,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장(藏置場) 및 컨테이너 조작장, 사일로[시멘트, 곡물 등 산적화물(散積貨物)의 저장시설을 말한다], 유류(油類)저장시설, 가스저장시설, 화물터미널 등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 5) 선박을 위한 연료공급시설과 급수시설, 얼음 생산 및 공급 시설 등 선박보급시설
- 6) 항만의 관제(管制)·정보통신·홍보·보안에 관련된 시설
- 7) 항만시설용 부지
- 8)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나목의 기능시설[제21조제3호에 따른 어항구(漁港區)(이하 이 조에서 “어항구”라 한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9)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의 어항편익시설(어항구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10) 방음벽, 방진망(防塵網), 수림대(樹林帶) 등 공해방지시설

다. 지원시설

- 1) 보관창고, 집배송장, 복합화물터미널, 정비고 등 배후유통시설
- 2) 선박기자재, 선용품(船用品) 등을 보관·판매·전시 등을 하기 위한 시설
- 3)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을 위한 시설
- 4) 공공서비스의 제공, 시설관리 등을 위한 항만 관련 업무용 시설
- 5)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사람, 항만시설 인근 지역의 주민, 여객 등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 및 항만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휴게소·숙박시설·진료소 등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위락시설·연수장·주차장·차량통관장 등 후생복지시설과 편의제공시설
- 6) 항만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이나 벤처산업 지원 등을 위한 연구시설
- 7)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기후변화 대응 방재시설 등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
- 8) 그 밖에 항만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

라. 항만친수시설(港灣親水施設)

- 1) 낚시터, 유람선, 낚시어선, 모터보트, 요트,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시설
- 2) 해양박물관, 어촌민속관, 해양유적지, 공연장, 학습장, 갯벌체험장 등 해양 문화·교육 시설
- 3) 해양전망대, 산책로, 해안 녹지, 조경(造景)시설 등 해양공원시설
- 4) 인공해변·인공습지 등 준설토(浚渫土)를 재활용하여 조성한 인공시설

마. 항만배후단지

바.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시설

6. “관리청”이란 항만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정관청을 말한다.

가.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 해양수산부장관

나.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7. “항만개발사업”이란 항만시설(항만구역 밖에 설치하려는 제5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장래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시설로 지정·고시할 예정인 시설을 포함한다)의 신설·개축·보강·유지·보수(補修) 및 준설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8. “항만물류”란 항만에서 화물이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 및 포장 등 일련의 처리과정을 말한다.

9.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란 관리청 및 항만을 이용하는 자가 항만물류비의 절감 및 각종 정보의 실시간 획득 등을 위하여 항만이용 및 항만물류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호교환·처리 및 활용하는 체계를 말한다.

10.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란 관리청 및 항만개발사업 관련자가 신속한 행정업무처리와 비용 절감 등을 통하여 항만개발사업의 전반적인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의 계획·설계·계약·시공·유지 및 관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호교환·처리 및 활용하는 체계를 말한다.

11. “항만배후단지”란 항만구역 또는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에 지원시설 및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고 이들 시설의 기능 제고를 위하여 일반업무시설·판매시설·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하여 제4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12.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이란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13.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14.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15. “입주기업체”란 제45조제1호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기 위하여 제7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항만의 구분 및 명칭·위치·구역 등) ① 항만은 다음 각 호의 항(港)으로 구분하되,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무역항

2. 연안항

② 무역항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및 지역균형 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으로 세분할 수 있다.

1. 국가관리무역항: 국내외 육상·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광역권의 배후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산업 지원 등으로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항만
2. 지방관리무역항: 지역별 육상·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③ 연안항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역의 여건 및 특성, 항만기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으로 세분할 수 있다.

1. 국가관리연안항: 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2. 지방관리연안항: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의 처리, 여객의 수송 등 편익 도모, 관광 활성화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④ 국가는 국가관리연안항의 개발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중앙항만정책심의회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0. 24.>

1. 제2조제5호바목에 따른 항만시설의 종류와 범위에 관한 사항
2. 제3조에 따른 항만의 구분 및 그 위치 등에 관한 사항
3.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36조에 따른 항만시설 기술기준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제37조에 따른 항만시설 관련 신기술의 적용 장려 및 시험시공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44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7.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8. 제49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9. 다른 법률에서 중앙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10. 그 밖에 항만의 개발·정비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의회에 분과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심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중앙심의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③ 제104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수임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고, 중앙심의회의 소관 사항 중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임기관의 장 소속으로 지방항만심의회를 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심의회, 분과심의회 및 지방항만심의회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항만기본계획

- 제5조(항만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이하 “항만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0. 2. 18.>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합리적인 항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 시기 및 규모 등의 산정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수행할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항만기본계획의 내용) ① 항만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의 구분 및 그 위치 등에 관한 사항
 2. 항만의 관리·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3. 항만시설의 장래 수요에 관한 사항
 4. 항만시설의 공급에 관한 사항
 5. 항만시설의 규모와 개발 시기에 관한 사항
 6. 항만시설의 용도, 기능 개선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항만의 연계수송망 구축에 관한 사항
 8.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항만구역 밖에 위치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수립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항만건설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산업단지개발계획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항만기본계획의 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항만 시설 수급 전망, 항만물동량 수요 예측 등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동이 있거나 항만의 효율적 개발·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항만기본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 또는 제7조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수립 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제3장 항만의 개발

제9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① 항만개발사업은 관리청이 시행한다. <개정 2020. 2. 18.>

②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개발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18.>

1.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을 유지·보수하는 항만개발사업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항만개발사업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항만시설 중 제2조제5호나목2)에 따른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를 추가·교체하는 항만개발사업일 것

나. 해당 구역의 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일 것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2022. 1. 4.>

1. 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계획(이하 “항만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기본계획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가. 항만기본계획

나.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
다.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

2. 항만의 관리·운영상 항만개발사업의 필요성이 있을 것

3. 재원조달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할 사업수행능력이 있을 것

4. 화물의 제조시설인 경우에는 오염배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할 것

5.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항만개발사업(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토지 또는 토지 형태의 항만시설을 조성하는 항만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성 등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을 것

6.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토지 또는 항만시설을 개발할 계획이 없을 것

④ 관리청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의 유지·보수(항로·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을 포함한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18., 2026. 2. 27.>

⑤ 관리청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0. 2. 18.>

⑥ 제2항 본문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는 허가받은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변경된 항만개발사업계획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 1. 4.>

⑦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만개발사업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18.>

⑧ 관리청은 제7항에 따라 공고한 항만개발사업에 대하여 허가신청인의 항만개발사업계획, 재원조달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적격자 중에서 우선순위자에게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18.>

⑨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제2항 본문, 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을 허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18.>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제10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 ① 관리청 또는 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관리청이 수립한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경우에는 관리청이 공고한다. <개정 2020. 2. 18.>

② 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18., 2022. 1. 4.>

③ 관리청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관리청은 항만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공고한 후 그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세부목록을 별도로 작성·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1. 4.>

④ 관리청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비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1.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이 항만개발사업계획에 적합할 것
2.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등 자금계획이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부합할 것
3.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이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40조까지 및 제41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이행사항을 충족할 것

⑤ 비관리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⑥ 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에 대한 승인 신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는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⑦ 관리청은 제2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4.>

제11조(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시행) 비관리청은 제10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항만개발사업을 착수하고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한 기한까지 준공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비관리청의 신청을 받아 착수시기 또는 준공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2022. 12. 27.>

제12조(항만개발사업의 준공) ① 관리청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완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② 비관리청은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허가받은 항만개발사업을 끝내면 지체 없이 항만개발사업 준공보고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③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받은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한 후 그 항만개발사업이 허가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확인증명서를 비관리청에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 2. 18.>

④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완료를 공고하거나 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내준 경우에는 제98조제1항 각 호의 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 등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2. 18.>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완료를 공고하기 전이나 제3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는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18.>

⑥ 관리청은 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4.>

제13조(부수공사의 시행) 관리청이나 비관리청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그 항만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부수공사(附隨工事)를 항만개발사업으로 보고 항만개발사업과 함께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제14조(항만공사의 대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시·도지사가 시행할 항만개발사업 중 군함, 경찰용 선박 및 그 밖에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개발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하는 항만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신설 2020. 2. 18.>

② 관리청은 항만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비관리청과 협의하여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허가한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을 그 비관리청의 비용 부담으로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제목개정 2020. 2. 18.]

제1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①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18.>

②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가 그 재원으로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항만시설공사를 시행하여 조성한 토지 및 설치한 항만시설이 준공된 경우 그 토지 및 항만시설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항만공사에 귀속된다.

③ 비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12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준공 전 사용기간을 산입한다. <개정 2022. 1. 4.>

④ 비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항만시설을 성실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⑤ 비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타인에게 그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제16조(토지의 매도청구) ① 비관리청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가 취득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시·도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개정 2022. 1. 4.>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매각 가격 및 그 산정 절차는 「국유재산법」 제44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 4.>

제17조(비귀속 토지·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용도 및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4.>

제18조(전용 목적의 토지·항만시설의 임대 금지) ①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 중 비관리청이 전용(專用)할 목적으로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아 조성·설치한 토지 및 항만시설을 취득한 자는 해당 토지 및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 4., 2022. 12. 2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토지 및 항만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료 징수 기준·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2. 27.>

제19조(비귀속 토지·항만시설의 양도제한 등) ①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을 취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토지 및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 1. 4., 2023. 10. 24.>

1. 해당 토지 및 항만시설을 취득한 날(비관리청의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 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2.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도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4. 비관리청이 분양 등을 목적으로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계획의 허가과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한 항만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토지 및 항만시설을 양도받은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리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4.>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토지 및 항만시설을 국가 또는 시·도에 기부채납한 자는 기부한 재산의 가액의 범위에서 해당 토지 및 항만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 4.>

④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에 기부한 토지 및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는 타인에게 그 토지 및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4.>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에 기부채납된 토지 및 항만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7조제2항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4.>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제20조(항만의 관리) ① 관리청은 무역항과 연안항을 관리한다. <개정 2020. 2. 18.>

② 관리청은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별로 항만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 4.>

제21조(분구의 설정 등) 관리청은 항만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구(分區)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1. 상업항구(商業港區)
2. 공업항구(工業港區)
3. 어항구
4. 여객항구(旅客港區)
5. 보급(補給) 및 지원항구(支援港區)
6. 위험물항구(危險物港區)
7. 보안항구(保安港區)
8. 위락항구(慰樂港區)
9. 친수항구

제22조(항만대장) ① 관리청은 항만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항만별로 항만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0. 2. 18.>

② 항만대장의 작성·비치·기재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항만관리법인)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항만시설의 관리 및 경비·보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이하 “항만관리법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② 항만관리법인의 지정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항만시설관리권) ① 관리청은 항만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항만시설관리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② 항만시설관리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저당권이 설정된 항만시설관리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

제25조(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 등) ① 제24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는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 1. 4.>

- ② 항만시설관리권이나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관리청에 갖추어 두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개정 2022. 1. 4.>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등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등기법」을 준용한다.
- ⑤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에 대한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이의(異議)의 비용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제26조(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이용 및 항만물류와 관련된 정보관리와 민원사무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이용자가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에서 정하는 표준화된 서식이나 표준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민원사무와 항만물류 관련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 ③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민원사무를 처리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장애 등으로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통한 민원사무의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민원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정보 관리 및 민원사무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7.>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 12. 27.>
- ⑤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는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로, “항만물류 관련 업무”는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업무”로 본다.<개정 2022. 12. 2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2. 12. 27.>

제28조(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2. 6.>

1.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이나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
2. 다량의 토석(土石)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항만의 깊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그 밖에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관리청은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개정 2022. 1. 4.>

1. 항만구역 내 방파제, 호안, 해안가 등 파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장소
2. 화물차량, 하역장비 등이 이동하거나 작업하는 장소
3. 그 밖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출입통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를 적극 알려야 한다.<개정 2022. 1. 4.>

④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출입통제 사유가 없어졌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출입통제 조치를 해제하고 제3항에 따른 공고 등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4.>

⑤ 출입통제의 공고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환경실태조사) ① 정부는 항만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구역에 대한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실태조사의 범위·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온실가스 등 감축) ① 이 법, 「해운법」 및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허가·등록 등을 받아 항만구역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항만사업자”라 한다)는 저탄소 항만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항만시설 이용에 있어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항만사업자에게 온실가스 등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감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의 설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31조(시설장비의 신고) ① 갑문, 운하, 하역장비, 그 밖에 조작이 필요한 항만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하 “시설장비”라 한다)을 사용·관리하는 자(관리청은 제외한다. 이하 “시설장비관리자”라 한다)는 해당 시설장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4.>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시설장비의 자체점검 등) ① 시설장비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관리하는 시설장비를 자체점검하여야 하며, 자체점검 결과 정비나 보수가 필요한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비관리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관리하는 시설장비의 자체점검기록과 정비·보수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시설장비의 검사 등) ① 시설장비관리자는 사용·관리하는 시설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청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2. 18.>

1. 제조검사: 시설장비를 제조할 때에 하는 검사
2. 설치검사: 완제품 형태의 시설장비를 설치할 때에 하는 검사
3. 정기검사: 사용 중인 시설장비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검사일이나 설치검사일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4. 수시검사: 고정식 시설장비를 이설(移設)하거나 시설장비의 구조를 변경할 때에 하는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종류별 검사 대상 시설장비의 범위와 검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관리청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0. 2. 18.>

제34조(검사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점검 또는 진단 등을 받은 시설장비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면제한다.

1.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점검 또는 진단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시설을 갖춘 시설장비관리자가 사용·관리하는 시설장비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한 후 검사성적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 서면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2. 18.>

제35조(검사업무의 대행) ① 관리청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②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검사대행기관이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해당 검사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대행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5항에 따른 검사업무의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검사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검사기준에서 정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검사증서를 발급하거나 검사결과와 다르게 검사증서를 발급하는 등 검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실시한 경우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1회 검사대행기관의 검사업무를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검사대행 기관으로부터 검사결과를 받아 확인·점검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업무의 개선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6조(항만시설의 기술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역시설, 외곽시설, 계류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② 항만개발사업을 설계하거나 시공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진설계(耐震設計) 기준에 맞게 설계하거나 시공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기술기준의 관리 및 운영
 2. 기술기준의 연구·개발 및 보급
 3. 기술기준의 검증 및 평가
 4. 국제 기술기준 관련 제도·정책의 동향에 관한 조사 및 분석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항만시설 기술기준의 발전을 위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신기술의 활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과 관련된 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의 항만개발사업에의 적용을 장려하고, 신기술의 시험시공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적용 장려 및 시험시공 지원 대상 등은 평가를 거쳐 정하며, 그 평가방법 및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를 거쳐 항만시설과 관련된 신기술을 적용하는 항만개발사업의 관리청 소속 계약사무담당자 및 설계 등 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해당 신기술의 적용으로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신설 2023. 10. 24.>

제38조(항만시설의 안전점검) ① 항만시설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갑문시설 및 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2. 제1호 외의 항만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항만시설의 소유자(국가 또는 시·도가 소유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점검 결과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제39조(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안전법」의 적용특례) ① 항만건설작업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건설장비를 고정적으로 탑재하여 항만구역 내에서 항만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선박안전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검사의 절차, 방법 및 시기 등을 같은 법의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따로 정한다.

② 항만건설장비 등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에 대해서는 「선박안전법」 제26조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따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선박안전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등업무를 대행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제1항에 따른 검사 중 항만건설장비의 검사업무를 해당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항만건설장비의 조종 자격요건)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장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득
2.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항만건설장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

제41조(항만시설의 사용) ① 항만시설(항로표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2022. 1. 4.>

1. 관리청[제10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항만시설운영자”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의 사용허가를 받을 것
2. 관리청과 임대계약을 체결할 것
3. 항만시설운영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할 것
4.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할 것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임대계약자”라 한다)의 승낙을 받을 것

- ② 비관리청은 제10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승낙을 받고 항만시설의 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③ 관리청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항만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으면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18.>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는 관리청, 해당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 2. 18.>

제42조(항만시설의 사용료 등) ① 관리청,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는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 ② 관리청은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여러 사람의 화물을 동시에 운송하는 경우로서 항만시설 사용자를 대리하여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를 하고 항만시설 사용자의 사용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사용료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2. 18.>
-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料率) 산정 시 고려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항만시설운영자나 임대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과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18.>
- ⑤ 관리청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4.>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시설의 사용료에 관하여는 관리청, 해당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 1. 4.>

제43조(비관리청 등의 사용료 징수) ① 제15조제5항 또는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자는 그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방법, 사용료의 요율,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 ② 관리청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4.>
-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용방법과 사용료의 요율 등이 사용자의 편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용방법의 변경, 사용료 요율의 변경, 그 밖에 항만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0. 2. 18.>
- 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항만배후단지

제1절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등

제44조(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만을 대상으로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을 위한 용지 및 항만시설의 수요에 관한 사항
2. 공유수면 매립지, 항만 유희부지(遊休敷地) 등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을 위한 용지의 계획적 조성·공급에 관한 사항
3. 항만배후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사항
4. 항만배후단지의 개발방향에 관한 사항
5.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한 항만시설의 정비와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中央審議會)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 개발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에 종합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구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항만배후단지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한다.

1. 1종 항만배후단지: 무역항의 항만구역 또는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
2. 2종 항만배후단지: 항만구역 또는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제1호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이하 “1종 항만배후단지”라 한다)로 지정한 지역은 제외한다]에 일반업무시설·판매시설·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항만 및 1종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제고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

제46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5조에 따라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이하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제7호의 사항은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한 후에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항만배후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목적
 3.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 주체·기간 및 방법
 4. 부지 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
 5.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6. 재원조달계획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8. 제54조에 따라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방향(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서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항만배후단지에 포함하여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소유한 자(이하 “토지소유자”라 한다)의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사업계획을 제출받아 그 계획을 기초로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 토지소유자는 항만배후단지를 원활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3항에 따라 수립된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7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및 공모) ①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또는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수립의 제안을 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절차 및 공모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항만배후단지 지정의 고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나 시·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해당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2. 18.>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6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만배후단지 지정의 고시 후에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세부목록을 별도로 고시할 수 있다.

제49조(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 ① 항만배후단지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항만배후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해양수산부장관이 제9조제1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그 지역에 대한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이 지연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 따른 개발 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
2.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 따라 제45조제2호에 따른 2종 항만배후단지(이하 “2종 항만배후단지”라 한다)로 지정되어 개발이 완료된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관리하여도 항만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 따라 개발이 완료된 항만배후단지가 주변 항만물류 여건의 변화, 입주기업체의 부족 등으로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이를 관보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절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제50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역항에서 1종 항만배후단지와 2종 항만배후단지가 인접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1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중앙심의회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지정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1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배후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3.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토지이용·교통처리 및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5.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6.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
 7. 조성토지의 처분계획서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2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항만배후단지에 필요한 도로, 공원, 녹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제54조(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의 일부(해당 항만배후단지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에는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이하 “원형지개발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과 원형지의 공급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원형지 공급계획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을 할 때에는 원형지 개발과 관련하여 용적률 등 개발밀도, 토지용도별 면적 및 배치, 교통처리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이행조건을 제5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약의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원형지개발자와 원형지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원형지개발자로부터 원형지 개발을 위한 공사의 착수 기한, 공사의 준공예정일, 사업기간 등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계획을 제출받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제46조제2항제8호에 따른 원형지 개발방향

2. 제1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

⑥ 원형지개발자(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원형지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다. 다만,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 이행의 촉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원형지 공급계약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에 따라 원형지를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시행자 또는 원형지개발자가 제4항에 따른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원형지개발자가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⑧ 사업시행자는 원형지개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5항에 따른 세부계획에서 정한 착수 기한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개발을 위한 공사에 착수한 후 제5항에 따른 세부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이내에 원형지 개발을 위한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항을 위반하여 공급받은 원형지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4. 그 밖에 원형지를 공급계약에서 정하는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제5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약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형지개발자의 선정기준, 원형지 공급의 절차와 기준, 원형지 공급가격,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 범위 및 원형지 공급계약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항만배후단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다.

② 항만배후단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국유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6조(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매각의 예약)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완료를 조건으로 제55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의 매각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이 예약된 재산의 사용·수익, 예약의 해지 또는 해제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4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7조(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항만배후단지에 있는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제46조에도 불구하고 30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24.>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최초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종전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재산에 필요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58조(준공확인)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끝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범위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한 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이 승인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확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한 결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이 승인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내용대로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98조제1항 각 호의 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59조(공사완료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8조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내준 경우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60조(항만배후단지의 귀속 등) ①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및 항만시설의 귀속 및 무상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비관리청”은 “사업시행자”로, “제12조제5항 단서”는 “제58조제5항 단서”로, “제15조제5항 또는 제19조제4항”은 “제6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5항”으로 본다.

② 사업시행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공공시설이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귀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을 등기할 때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서와 제5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제61조(토지의 매도청구) ① 사업시행자는 제5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6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매각 가격 및 그 산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2조(조성토지의 처분)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여 취득한 토지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따라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처분방법·처분절차·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해당 항만배후단지의 항만시설용지 등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2. 해당 항만배후단지의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의 부담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발생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개발이익의 산정 기준”으로, “부과 종료 시점”은 “개발이익 산정 종료 시점”으로, “부과 대상 토지”는 “개발이익 산정 대상 토지”로, “부과 개시 시점”은 “개발이익 산정 개시 시점”으로, “부과 기간”은 “개발이익 산정 기간”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 “개발사업의 인가등”, “개발사업 인가등” 또는 “인가등”은 “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으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은 “준공확인”으로, “납부 의무자”는 “사업시행자”로, “개발사업”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

제64조(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9조에 따라 공사완료의 공고를 한 경우 입주기업체 등 해당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는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운영

제65조(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관리지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지침의 내용 및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업무 범위를 나누어 둘 이상의 기관을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3. 1종 항만배후단지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③ 같은 1종 항만배후단지에 토지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들이 협의를 거쳐 제2항제3호에 따른 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것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지정되기 전에 1종 항만배후단지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관리권자(같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관리권자의 권한이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가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변경 지정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기관의 지정 및 변경 지정의 절차, 지정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관리기관의 업무) 관리기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주기업체의 관리 및 사업활동 지원
2. 공동시설의 유지 및 관리
3. 각종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 또는 운영에 관한 업무

제68조(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할 1종 항만배후단지의 면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1종 항만배후단지 지원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입주자격) ① 1종 항만배후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주할 수 있다. 다만,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제2호·제3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물류의 원활화 및 물동량 창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2호·제3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는 것으로 입주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2022. 12. 27.>

1. 관할 항만을 이용하여 반입·반출되는 화물을 하역·운송·유통·판매·보관·전시하는 사업 또는 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2.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에 입항·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화물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매출액 대비 수출입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 2의2. 관할 항만에 입항·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내복귀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관할 항만에 입항·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물동량 창출이 가능한 제조업을 하려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4. 지식서비스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수출입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5. 관할 항만에 입항·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을 하려는 자로서 수출입거래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6.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7. 항만친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8. 항만의 관리·운영과 직접 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입주하고 남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및 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토지 및 시설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를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제70조(우선입주) 관리기관은 제69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의 제7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의 체결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우선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1. 항만물류 사업(컨테이너에 화물을 넣거나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꺼내는 물류활동을 포함한다)으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2. 수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3. 제6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으로서 국내복귀 이전 총매출 대비 국내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의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제71조(입주계약) ①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주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업종 및 시설내용 등을 포함하는 사업 시설 조성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입주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 및 계약의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입주계약의 해지)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관리기관이 시정을 명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입주기업체가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9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하거나 입주계약 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3. 제71조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폐업한 경우

제73조(입주계약의 해지에 따른 처리) ① 제72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잔무 처리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② 제72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1종 항만배후단지에 소유하는 토지나 공장·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입주기업체나 제69조에 따른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토지나 공장등을 양도하려는 자는 양수인에게 제69조 및 제72조에 따른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해지 사유를 양도·양수 계약 전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74조(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① 제60조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지 아니한 1종 항만배후단지의 토지(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해당 토지를 포함한다)를 분양받은 입주기업체 또는 제2항에 따라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제7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사업시설 조성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거나 양수한 토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24.>

1.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 ② 입주기업체는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토지를 양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입주기업체나 제69조에 따른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양도가격은 양도인이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인이 요청한 경우 토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 ④ 입주기업체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후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거나 임대[전대(轉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양수인 또는 임차인은 입주기업체 또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로 한정한다.
-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자는 양수인 또는 임차인에게 제69조 및 제72조에 따른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해지 사유를 양도·양수 계약 또는 임대 계약 전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75조(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① 1종 항만배후단지 안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경매나 관련 법률에 따라 취득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할 것. 다만, 입주기업체를 인수 또는 합병한 자가 입주자격을 갖추고 종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7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2. 제1호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입주기업체나 제69조에 따른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할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려는 자는 양수인에게 제69조 및 제72조에 따른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해지 사유를 양도·양수 계약 전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76조(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운영) 제69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다.

제77조(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운영비) ① 관리기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공동시설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입주기업체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와의 협약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공동시설의 관리비·운영비 외에 제5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조성하여 취득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입주기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다. <신설 2022. 12. 27.>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비의 부담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27.>

[제목개정 2022. 12. 27.]

제78조(1종 항만배후단지 안의 조경의무 면제)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 내에서 해당 입주기업체 부지에 대한 같은 조에 따른 조경 의무를 면제한다.

제6장 항만에 관한 비용 등

제79조(비용부담 원칙)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리청이 해양수산부장관인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청이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시·도가 항만의 관리 및 시설에 관한 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2020. 2. 18.>

② 비관리청이 제9조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은 비관리청이 부담한다.

- ③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④ 공공단체나 사인(私人)이 그가 필요하여 항만시설의 경미한 보수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공공단체나 사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제80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항만배후단지에 필요한 도로·철도·용수시설(用水施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의 설치 등은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기업체 또는 1종 항만배후단지 지원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1조(의무 이행에 필요한 비용)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조건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생긴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의무자가 부담한다.

제82조(사용료 등의 강제징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조건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관리청에 사용료 등 납부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2020. 3. 24.>

제7장 감독

제83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이나 시설장비 사용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2022. 12. 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 가.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허가
 - 나.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다.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 라.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 마.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바. 제66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
2.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허가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제10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변경 신고 및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신고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4. 제11조를 위반하여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착수시기가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착수시기 이내를 말한다)에 항만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면제받은 경우
6.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제42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
8. 사업시행자가 제5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형지를 공급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이나 시설장비 사용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 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제84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허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83조에 따른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1. 항만의 상황 변경이나 항만의 효율적 관리·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항만 내 화물 적체로 항만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85조(보고 및 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허가·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또는 항만시설운영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허가·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자, 시설장비관리자 또는 항만시설운영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항만개발사업 상황, 항만시설, 물건 및 관계 문서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1. 다음 각 목의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가.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허가의 내용
 - 나.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의 내용
 - 다.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 자체점검의 내용(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로 한정한다)
 - 라.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의 내용 및 항만시설운영자의 항만시설 운영의 내용

2.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여 항만의 관리·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 및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은 입주계약의 이행 여부, 사업실적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입주기업체 및 그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자료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려는 자는 검사일 7일 전까지 출입검사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에 관한 출입검사의 계획을 피검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출입검사의 계획이 알려지면 출입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검사를 할 때에는 성명, 출입검사의 시간, 출입검사의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86조(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세법」에 따른 통관 절차가 끝난 날부터 2개월 이상 화물을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내항화물(內航貨物)을 항만시설에 장치(藏置)한 후 2개월 이상 반출하지 아니하여 항만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화물의 소유자에게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화물을 반출할 것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도 해당 화물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가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통보나 독촉통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화물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독촉통보기간이나 공고기간에 그 화물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화물을 매각 또는 폐기하거나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시킬 수 있다. <개정 2020. 2. 18.>

③ 항만시설운영자나 임대계약자는 그가 관리·운영하는 항만시설에 장치된 화물 중 「관세법」에 따른 통관절차가 끝난 날부터 2개월 이상 반출하지 아니하여 항만 운영에 지장을 주는 화물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제8장 공용부담 및 손실보상

제87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비관리청 및 사업시행자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및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측량 또는 항만개발사업·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와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7일 전까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출입 및 일시 사용하려는 자 등의 인적사항,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을 서면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③ 비관리청 및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동의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④ 해 뜨기 전 또는 해 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이 예정된 공유수면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 29.>

⑦ 제5항에 따른 증표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8조(비상재해의 경우 토지 등의 사용)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재해(災害)로 인한 항만시설의 위협이나 항만 사용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항만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재해의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노무(勞務)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재해 현장에 필요한 토지·가옥·선박, 그 밖의 공작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공작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흙, 돌, 나무, 운반도구, 그 밖의 물건(공작물은 제외한다)을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제89조(토지 등의 수용)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 물건 또는 권리(「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허가어업과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 그리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업과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양식업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9., 2020. 2. 18., 2022. 1. 11.>

- ② 제10조제1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공고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지정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10조제3항 단서 또는 제48조제2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세부목록을 별도로 공고·고시한 경우에는 해당 공고·고시를 한 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에의 재결(裁決)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 기간에 할 수 있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해역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22. 1. 4.>
- ⑤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90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를 포함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지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을 포함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환지 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1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는 항만배후단지와 인근 지역의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할 시·도지사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93조(공용부담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①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른 행위 또는 처분 등으로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한 행위나 처분 등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시·도가 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가 한 행위나 처분 등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가 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 ②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비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결정한 금액을 손실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供託)하고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2. 18.>
- ④ 제3항에 따른 보상금에 불복하는 자는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거나 공탁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⑤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 기간에 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허가어업과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 그리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업과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양식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0. 1. 29., 2022. 1. 11.>

제94조(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제84조에 따른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5조(항만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① 제9조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거나 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장 보칙

제96조(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의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2. 18.>

1.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 허가

2.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에 항만구역을 반영하려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호지구(항만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

3. 항만구역,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경우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항만구역이나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에서 「광업법」,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광업권 등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9., 2020. 2. 18.>

제97조(행위 제한 등) ① 항만배후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서의 행위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8조(관련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공고한 경우,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여 공고한 경우 및 제51조제5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결정·면허·협의·동의·승인·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가·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2. 18., 2021. 11. 30., 2022. 12. 27.>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분할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9.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입목·죽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11.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공장의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 및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승인 등
 1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16.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1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18.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9.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에 따른 보호수면에서의 공사시행 승인
 20.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 허가
 21. 「자연공원법」 제71조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22.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4.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2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2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보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
1.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

2. 제44조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2023. 5. 16.>

1. 제10조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할 때

2. 제10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한 내용을 변경 승인할 때

3. 제5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한 내용을 변경승인할 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기 전에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마칠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인가·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 4.>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5. 16.>

제99조(인가·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98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② 제98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제100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1. 제35조제4항에 따른 검사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2. 제50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변경 또는 지정의 취소

3. 제72조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계약의 해지

4. 제83조 또는 제84조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허가의 취소,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항만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제101조(권리·의무의 이전) ①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이전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권리·의무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20. 2. 18.>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권리·의무의 이전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0. 2. 18.>

제102조(한국항만협회의 설립) ① 항만건설 관련자는 항만건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과 항만건설 관련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등 항만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항만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항만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2. 항만건설기술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3. 항만건설에 따르는 조사·설계·감리·기술에 관한 용역 및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4. 항만건설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지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협회의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의 기재사항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실·사업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질문을 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3조(항만 관련 국제협력 등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 항만 및 항만 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의 증진 및 관련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항만 관련 국제협력사업의 발굴, 관리, 조사·연구 및 정보 제공
2. 항만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인적 교류 및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3. 해외항만개발사업 진출 자문 및 기술지원
4. 항만 및 항만 산업과 관련한 정보의 국제적 교환 및 홍보
5. 항만 관련 국제기구 및 원조 관련 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에 항만 및 항만 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 증진 및 해외 시장 진출과 관련된 업무

제104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협회, 「항만공사법」 제4조에 따른 항만공사, 「한국해운조합법」 제4조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또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5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06조(조세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비관리청이 실시하는 항만개발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장 벌칙

제107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시설의 구조 또는 위치를 변경하거나 항만시설을 훼손하여 항만의 효용을 떨어뜨리거나 선박의 입항·출항에 위해(危害)를 발생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4. 제71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에서 사업을 한 자
5. 제72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후 제73조제1항에 따른 잔무 처리 외에 그 사업을 한 자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2. 18.>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2.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3. 제17조를 위반하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용도 및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 목적과 다르게 토지 및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 및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
5. 제28조를 위반하여 항만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자
6. 제41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
8. 제51조제1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88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행위 또는 처분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 12. 27.>

1. 제12조제5항 단서 또는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
2.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 및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한 자
3.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4. 제40조를 위반하여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항만건설장비를 조종한 자
5. 제73조제2항, 제74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한 자
6. 제75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 또는 사용한 자
7. 제83조제1항 및 제8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원상회복 또는 시설장비 사용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8. 항만배후단지에서 제9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9. 제102조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제11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심의회, 분과심의회 및 지방항만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104조제2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하는 협회, 항만공사, 한국해운조합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임직원

제11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 1. 4.>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양수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점검 결과 정비·보수가 필요한 시설장비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기록과 정비·보수에 관한 기록을 작성·관리하지 아니한 자
5.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6. 제34조제2항의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7. 제35조제4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검사대행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 자
8. 제35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작성·제출한 자
10.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73조제3항, 제74조제5항 또는 제75조제2항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85조제1항 또는 제2항(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6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관리기관의 자료제출 요청 및 출입검사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자
13. 정당한 사유 없이 제87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제10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도지사, 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4. 제8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에 출입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한 자
15. 제87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에서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16. 제10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한 자
- ② 제28조제2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7호·제8호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22. 1. 4.>

부칙 <제16568호, 2019. 8. 27.> (양식산업발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법률 제16902호 항만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0. 1. 29.>

제87조제6항 후단 중 “ 「수산업법」 ”을 “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으로 한다.

제89조제1항 중 “ 허가어업 및 ”을 “ 허가어업과 ”로, “ 신고어업에 관한 ”을 “ 신고어업, 그리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업과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양식업에 관한 ”으로 한다.

제93조제6항 중 “ 허가어업 및 ”을 “ 허가어업과 ”로, “ 신고어업에 대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을 “ 신고어업, 그리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업과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양식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규정을 ”로 한다.

제96조제3항 중 “ 「수산업법」 ”을 “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으로 한다.

<56>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6902호, 2020. 1.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변경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의 착수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본문의 개정규정 중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착수기한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0조제2항 또는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토지의 매도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및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2조제3항 또는 제5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비귀속 토지·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2조제3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비귀속 토지·항만시설의 양도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입주계약 등에 관한 적용례)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9조(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1종 항만배후단지에서 토지를 분양받거나 양수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10조(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이전에 대한 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01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권리·의무를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항만법」에 따른다.

제14조(지방항만정책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법」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지방항만정책심의회는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항만심의회로 본다.

제15조(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법」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허가 또는 그에 대한 신청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또는 그에 대한 신청으로 본다.

제16조(상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법」에 따라 설정된 상항구는 제21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정된 상업항구로 본다.

제17조(정기점검·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법」에 따라 실시하였거나 실시 중에 있는 정기점검·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은 제3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으로 본다.

제18조(항만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협회는 제10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만협회로 본다.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제1항제4호 중 “「항만법」 제42조”를 “「항만법」 제46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③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6호 중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항만법」 에 따른 항만공사 ” 를 “ 「항만법」 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 으로 한다.

별표 제107호 중 “ 항만공사,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 항만재개발사업 ” 을 “ 항만개발사업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 으로 한다.

⑥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⑦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⑧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 「항만법」 제30조 ” 를 “ 「항만법」 제42조 ” 로 한다.

⑨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4호 중 “ 「항만법」 제30조 ” 를 “ 「항만법」 제41조 ” 로 한다.

⑩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⑪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⑫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8.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⑬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⑭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⑮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항만법」 제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항만”을 “「항만법」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으로 한다.

1^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 중 “「항만법」 제89조”를 “「항만법」 제26조”로 한다.

1&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7호 중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계획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을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제30조제1항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4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항만법」 (제28조만 해당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5호 중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후단 및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법」 제30조제1항”을 각각 “「항만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을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로 한다.

2*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중 “「항만법」 제89조”를 “「항만법」 제26조”로 한다.

2(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9조 중 “「항만법」 제89조”를 “「항만법」 제26조”로 한다.

3)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3!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3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3@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후단 중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공사를 시행하여 완료한 경우”를 “제9조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한 경우”로, “제85조제1항 각 호의 허가 등”을 “제98조제1항 각 호의 허가 등”으로,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항만 시설”을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항만시설”로 한다.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 법률 제16568호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5조제5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5> 법률 제16902호 항만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6항 후단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89조제1항 중 “허가어업 및”을 “허가어업과”로, “신고어업에 관한”을 “신고어업, 그리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업과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양식업에 관한”으로 한다.

제93조제6항 중 “허가어업 및”을 “허가어업과”로, “신고어업에 대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을 “신고어업, 그리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업과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양식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규정을”로 한다.

제96조제3항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3%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2호 중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을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1항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법률 제16774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364조제9항제1호 중 “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공사”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항만공사실시계획”을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으로, “항만공사”를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제439조제2항 중 “「항만법」 제11조 본문, 제16조제1항, 제20조, 제61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62조 및 제83조제1항(허가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경우의 협의·승인에 한정한다)부터 제3항까지”를 “「항만법」 제11조 본문, 제20조, 제24조제1항, 제58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59조 및 제96조제1항(허가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경우의 협의·승인으로 한정한다)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항만법」 제2조제5호, 제7조제3항 단서, 제9조, 제10조제2항·제4항·제5항·제7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82조, 제83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로 한정한다)부터 제89조까지,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 제100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으로 한정한다), 제101조, 제105조 및 제113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439조제4항 중 “「항만법」 제19조제1항”을 “「항만법」 제2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항만법」 제10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3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31조제3항, 제74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93조”를 “「항만법」 제10조제5항, 제25조제3항, 제41조제1항 전단, 제4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3조제4항, 제83조제3항, 제86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제87조제7항 및

제105조 ” 로 한다.

4#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19호 근거 법률란 중 “ 「항만법」 제42조 ” 를 “ 「항만법」 제45조 ” 로 한다.

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5)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 「항만법」 제16조 ” 를 “ 「항만법」 제24조 ” 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항만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제31조 전단 중 “ 「항만법」 제74조 ” 를 “ 「항만법」 제86조 ” 로 한다.

<51>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 「항만법」 제30조제1항 본문 ” 을 “ 「항만법」 제41조제1항제1호 ” 로 한다.

제29조의2 중 “ 「항만법」 제89조 ” 를 “ 「항만법」 제26조 ” 로 한다.

<52>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항만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의 신설·개축(改築)·유지·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를”을 “「항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을”로 한다.

<53>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항만법」 제9조부터 제19조까지”를 “「항만법」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제24조 및 제25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54>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중 “「항만법」 제89조”를 “「항만법」 제26조”로 한다.

<5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5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46조의4제1항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제2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만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007호, 2020. 2. 18.>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7171호, 2020. 3. 31.> (전기안전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전기사업법」 제65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로 한다.

제85조제1항제23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56>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7620호, 2020. 12. 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22호, 2021. 11. 3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27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15조 생략

부칙 <제18701호, 2022. 1.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55호, 2022. 1. 11.> (수산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 까지 생략

2^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1항 및 제93조제6항 중 “ 「수산업법」 제8조 ”를 “ 「수산업법」 제7조 ”로 하고, “ 같은 법 제41조 ”를 각각 “ 같은 법 제40조 ”로 하며, 제89조제1항 및 제93조제6항 중 “ 같은 법 제47조 ”를 각각 “ 같은 법 제48조 ”로 한다.

2& 부터 3% 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 <제19117호, 2022. 12. 2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2>까지 생략

<93>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12호 중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 ”으로 한다.

<94>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9140호,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료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415호, 2023. 5. 16.>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부칙 <제19778호, 2023. 10.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재산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용허가 또는 대부한 국유재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0231호, 2024. 2. 6.> (화학물질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 까지 생략

2[&]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유독물”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2* 부터 3!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1415호, 2026. 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개발사업 허가 여부 통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9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고 통지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항만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39호, 2026. 6. 23.,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 항만제도 일반) 051 - 773 - 5920, 5921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051 - 773 - 5965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 운영) 051 - 773 - 5755,
 5758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 - 항만시설의 사용) 051 - 773 - 5775, 578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 11호 및 제45조제2호에서 “일반업무시설, 판매시설, 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6. 7., 2025. 3. 11.>

1. 일반업무시설
2. 판매시설
3. 주거시설 및 숙박시설
4. 정보처리시설
5. 근린생활시설
6.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운동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위락시설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 등의 기능 제고와 항만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3조(항만의 명칭 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항만의 구분, 명칭, 위치 및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4. 30.>

② 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2024. 4. 30., 2025. 10. 1., 2025. 12. 30.>

1.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관세청 및 소방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
 2.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
 3. 항만의 개발·운영, 도시·군계획, 건축·경관, 환경, 해양레저,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항만 이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는 사람
-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은 중앙심의회 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분과심의회(이하 “분과심의회”라 한다)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기술기준분과심의회와 신항만건설분과심의회는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심의회 위원장이 분과심의회 의장을 별도로 지명할 수 있다.<개정 2024. 4. 30.>
- ⑤ 중앙심의회 또는 분과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중앙심의회 위원장 또는 분과심의회 의장은 그 소관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전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중앙심의회 위원(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심의회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해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안전에 관해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②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중앙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지명 철회 등) ① 제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4. 4. 30.>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7조(분과심의회회의 구분 및 기능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앙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과심의회를 둔다. <개정 2024. 4. 30., 2025. 3. 11.>

1. 항만분과심의회: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9호(「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신항만건설 촉진법」에서 중앙심의회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0호(항만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사항 심의
2. 항만재개발분과심의회: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중앙심의회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및 법 제4조제1항제10호(항만재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사항 심의
3. 마리나분과심의회: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중앙심의회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및 법 제4조제1항제10호(마리나항만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사항 심의
4. 항만시설기술기준분과심의회: 법 제4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10호(항만시설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사항 심의
5. 신항만건설분과심의회: 「신항만건설 촉진법」에서 중앙심의회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및 법 제4조제1항제10호(신항만건설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사항 심의

②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 및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의회 및 분과심의회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지방항만심의회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지방항만심의회(이하 “지방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 지방심의회회의 위원장은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시·도지사 소속 지방심의회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시장·부지사로 하며, 각 지방심의회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항만의 운영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2. 관할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3. 항만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는 사람
-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지방심의회 위원장은 지방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⑤ 지방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지방심의회 위원장은 그 소관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전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⑦ 지방심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지명 철회 등에 관해서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심의회”는 “지방심의회”로, “제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는 “제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로, “제4조제2항제3호”는 “제8조제2항제3호”로 본다.

제9조(지방심의회 기능) 지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앙심의회 심의사항 중 위임된 사항
2. 관할 항만의 개발·재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중앙심의회, 분과심의회 및 지방심의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전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거나 안전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장 항만기본계획

제11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 항만물동량 현황조사 및 변동요인 분석
2. 중장기 및 연도별 항만물동량 예측
3.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이하 “항만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합리적인 수립 및 변경을 위해 필요한 항만개발의 수요 및 적정성 등에 관한 조사·연구

제12조(항만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1. 16.>

1. 항만시설별 항만개발사업 규모 또는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된 항만개발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한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 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
 - 나.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
 -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 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 마.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포함된 항만개발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한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 가. 「국가재정법」 제5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당성재조사 결과
 -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
 - 다.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검토의견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 가. 공유수면 매립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항만시설의 위치 변경
 - 나. 항만시설 규모의 변경이 없는 항만시설 명칭의 변경
 - 다. 계류시설 규모의 변경이 없는 계류시설 접안 능력의 증대
 - 라. 돌핀(선박을 매어두거나 접안시키는 말뚝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법선(法線: 계류시설에서 선박이 접안하는 면의 상부 끝단을 연장한 선) 범위 내에서의 해당 돌핀의 시설 변경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3장 항만의 개발

제13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신청 등) ①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시행·변경 허가(항만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시행·변경 허가는 제외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9.>

1.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② 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및 도면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7. 4.>

1.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업계획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2.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및 그 산출명세
 3. 항만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조달계획(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도 첨부해야 한다)
 4.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나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또는 지적평면도와 인접지를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5. 제14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법 제9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또는 토지 형태의 항만시설을 조성하는 항만개발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6.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기준에 관한 서류로서 투자비 보전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공고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자금의 조달계획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고시한다.
- ④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시행·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허가신청서에 평면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면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12. 29.>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유지·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구간·규모 및 기간
 3. 유지·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항만시설의 사용계획

제14조(화물의 제조시설 입지기준 등) ① 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오염배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장입지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 ② 법 제9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항만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통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사업 추진의 타당성 여부를 미리 검토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을 통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자와 그 실시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2. 7. 4.>
1.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는 토지 및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청이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공고 전까지 실시
 2.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토지 형태의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 시행 또는 변경(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에서 500억원 이상으로의 변경으로 한정한다)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허가 신청 전까지 실시

제15조(항만개발사업 변경허가의 대상) 법 제9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7. 4.>

1.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제16조(공고 대상 항만개발사업) 법 제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만개발사업”이란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는 토지 및 항만 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 12. 29.>

1. 개발사업비(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발사업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0억 원 이상의 항만시설 신설·개축(보강을 포함한다) 사업
2. 개발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준설(浚渫) 사업. 다만, 국가 또는 시·도가 투자비를 보전(補填)하지 않는 준설사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관리청이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항만개발사업

제17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공고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이 영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 공보 또는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항만개발사업 예정지역 안의 이해관계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2. 총사업비의 100분의 5 범위에서의 변경
3. 사업면적의 100분의 5 범위에서의 변경
4. 지형 또는 지질 사정으로 인한 항만시설 등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서 결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
6. 1년의 범위에서의 사업시행기간의 변경(사업시행기간을 여러 차례 변경한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간의 변경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7. 단순한 착오·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 착오 등에 따른 사업면적 등의 정정

제18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항만개발사

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2024. 5. 7., 2025. 2.

13.>

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평면도
2. 항만개발사업실시설계도서
3. 자금계획서(연도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4.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 및 이에 따른 조치 계획(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 및 이행 계획서(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사업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진단보고서 및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이행 결과(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영향진단의 대상 사업으로 한정한다)
8.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법 제45조에 따라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토지로 한정한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항만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에 대한 법 제16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계획서를 포함한다)

② 관리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만개발사업의 단계별로 실시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단계별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은 전 단계 사업의 준공일 전에 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③ 관리청은 제1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고 대상인 항만개발사업과 제2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토지 및 토지의 형태로 조성된 항만시설을 위한 항만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설계도서(이하 “항만개발사업실시설계도서”라 한다)가 적정한지에 대해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승인한 사항을 변경승인하는 경우로서 관리청이 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12. 29.>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시행허가의 신청을 할 때에 항만개발사업실시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1. 야적장의 포장(鋪裝)
2. 창고·헛간 및 위판장(委販場)의 설치(증축·개축 및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하역장비시설, 화물 이송시설, 배관시설 및 무게 측정시설의 설치

4. 선가대(船架臺: 선박을 땅 위로 끌어 올려놓을 수 있는 구조물 및 설비) 및 얼음 생산·공급 시설의 설치
5. 항로·정박지 등 수역시설의 준설(「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지원시설(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 및 토지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을 말하며, 화물의 제조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항만개발사업 외에 관리청이 인정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

제19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신고) ①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제2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항만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항만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5호가목4)에 따른 계류시설
 2. 법 제2조제5호나목4)에 따른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3. 법 제2조제5호다목3)에 따른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을 위한 시설
- ② 비관리청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비관리청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신고 대상 사업으로서 제1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시행허가의 신청을 할 때에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제도를 첨부하여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함께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9.>

제20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또는 신고 기한의 연장) 법 제10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0. 12. 29.>

1. 항만개발사업 여건의 변경 등 비관리청의 귀책사유 없이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이 곤란하게 된 경우
2. 그 밖에 승인 신청 또는 신고의 기한을 연장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

제21조(준공 공고) 관리청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거나 해양수산부 또는 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9., 2025. 2. 7.>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4.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매립지의 지목 및 면적[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

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에 기재된 면적을 말한다]

5. 항만개발사업 완료일

제22조(준공검사)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는 관리청이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확인으로 준공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2021. 2. 9., 2021. 9. 14.>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항만개발사업의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
2. 준설공사의 경우: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해양정보 사본
3.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의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발급하는 사용승인서

제23조(항만공사의 대행) ①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서 “군함, 경찰용 선박 및 그 밖에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개발사업”이란 군함, 경찰용 선박 및 그 밖에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을 말한다.

② 관리청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이 시행할 항만개발사업을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비관리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1. 항만개발사업의 종류·규모 및 금액
2. 항만개발사업의 기간(착공 및 준공의 예정일과 주요 공정을 포함한다)
3.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방법과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5. 3. 11.]

제24조(국가 등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항만시설)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로 한다. <개정 2020. 12. 29.>

1. 별표 4에 따른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해당 토지의 가액(價額)이 제25조에 따른 총사업비의 범위 이내일 것. 이 경우 총사업비는 해당 토지의 조성공사에 사용된 금액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가액은 비관리청이 시행한 해당 항만개발사업의 준공확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지정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감정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개정 2020. 12. 29.>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다시 해당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가액은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시 감정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개정 2020. 12.

29.>

1. 평가액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된 경우
2. 감정평가법인등이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하는 등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 ④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12. 29., 2022. 7. 4., 2025. 3. 11.>

1. 하역시설(고정식 하역장비의 운영에 필요한 레일시설은 제외한다) 및 무게 측정시설
2. 사일로(국가 또는 시·도가 소유하는 사일로를 비관리청이 증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저유시설(貯油施設) 및 가스저장시설
3. 비관리청이 전용(專用)할 목적으로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 경우 비관리청의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제1항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 및 사용하기 위해 전단에 따라 비관리청에 귀속된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관리청이 그 시설을 전용하는 것으로 본다.

가. 계류시설 및 항행 보조시설

나. 화물의 유통시설·판매시설 및 위판장시설(제4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위판장은 제외한다)

다. 선박보급시설 및 항만의 관제(管制)·정보통신·홍보·보안시설

4. 법 제21조제3호에 따른 어항구에 설치된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26조 각 호에 따른 시설
5. 공해방지시설
6. 지원시설. 다만, 항만 관련 업무용 시설 중 관리청(제93조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을 포함한다)이 조성한 공공서비스 업무용 시설은 제외한다.
7. 항만친수시설(港灣親水施設) 중 해양레저용 시설 및 해양 문화·교육 시설
- 7의2.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하는 제2조 각 호의 시설
8. 그 밖에 비관리청의 전용 목적이 강하여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는 시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토지의 형태로 조성된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의 요건은 제외한다),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제목개정 2020. 12. 29.]

제25조(총사업비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해당 항만개발사업의 준공확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항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사용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8. 26., 2021. 9. 14., 2022. 7. 4.>

1. 조사비: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와 그 밖의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2. 설계비: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드는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에 드는 비용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업무에 대한 대가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3. 개발사업비: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말한다)에 따라 계산한다.
 4. 보상비: 항만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지급된 토지매입비[건물·입목(立木)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이주대책비 및 영업권·어업권·양식업권·광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를 말한다.
 5. 부대비: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산정기준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건설사업 관리비
 - 나. 계약을 통해 측량, 조사, 설계, 공사 또는 건설공사 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를 준용해 산정한 물가상승에 따른 증가액
 - 다. 환경영향평가에 드는 비용, 피해영향조사비, 매립면허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및 건설공사 손해보험료
 - 라.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각종 세금, 공과금, 부담금 및 수수료나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조건의 이행에 드는 모든 비용
 6. 건설이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비용에 대한 건설이자(이자율은 사업기간 중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정기예금 수신금리와 대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적용하며, 그 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말한다. 다만, 비관리청이 고의로 개발사업을 지연시킨 경우 또는 비관리청의 과실로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비관리청의 귀책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기간에 대한 건설이자는 제외한다.
 7. 부가가치세: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 및 항만시설을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시킬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7조에 따라 납부하는 세액을 말한다.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비용은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총사업비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2. 7. 4.>

1.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지 않은 토지 및 항만시설의 개발 사업과 관련된 비용
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로 입증되지 않는 비용
3.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수역시설의 준설에 드는 비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4. 하자보수 보증보험비용

제26조(귀속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무상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합한 금액이 제25조에 따라 산출된 총사업비에 이를 때까지로 한다. 이 경우 무상사용기간을 산정할 때에 적용할 항만시설의 사용료는 해당 항만시설의 사용 당시의 항만시설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의 사용료는 같은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2. 7. 4.>

1.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된 해당 항만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
 2. 법 제43조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징수하는 항만시설 사용료
 3. 제45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료가 면제되는 항만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의 사용료
- ②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비관리청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가액을 제외한 잔액을 총사업비로 확정하여 제1항에 따른 무상사용기간을 산정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토지가액의 산정에 관해서는 제24조제2항에 따른다.

제27조(매도청구 대상 토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를 말한다.

1. 법 제45조에 따라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토지(공공시설용지는 제외한다)일 것
 2. 제18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계획서에 항만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매도청구에 관한 계획이 명시된 토지일 것
-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토지의 매각 가격의 산정 절차에 관해서는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가액”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토지의 매각 가격”으로, “비관리청이 시행한 해당 항만개발사업의 준공확인 신청일”은 “비관리청이 토지의 매도를 청구한 날”로 본다.

제28조(비귀속 토지·항만시설의 양도제한 등) ①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토지 및 항만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7. 4.>

1. 제24조제1항에 따른 토지
2. 제24조제4항제3호、제4호、제6호、제7호 및 제8호(투기 목적으로 개발할 우려가 있다고 관리청이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따른 항만시설
-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2. 7. 4.>
 1. 상속 또는 법인의 분할、합병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해 처분하는 경우
 3.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서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처분하는 경우
 4. 비관리청(법인은 제외한다)이 항만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항만시설의 전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5. 법 제72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가 1종 항만배후단지에 소유한 토지나 공장、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처분하는 경우
 6. 그 밖에 항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비관리청이 토지、항만시설을 처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
-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무상사용에 관해서는 제26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5조제3항”은 “법 제19조제3항”으로 본다.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제29조(분구의 설정) 관리청은 법 제21조에 따라 분구(分區)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명칭、위치 및 구역과 취급화물 및 입항、출항 선박의 종류를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9.>

제30조(항만관리법인의 지정)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항만관리법인(이하 “항만관리법인”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관리법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9.>

1. 임원의 성명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3. 사업계획서(화물에 대한 경비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 근거를 포함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항만시설의 관리、경비 및 보안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춘 자 중에서 항만관리법인을 지정한다.<개정 2020. 12. 29.>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관리법인의 지정기준 및 업무 범위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항만관리법인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항만관리법인은 매 사업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3월 2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12. 29.>

제32조(지도·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항만관리법인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항만관리법인의 장부·서류·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항만관리법인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9.>

제33조(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항만별로 구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통한 민원사무 및 항만물류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표준서식과 표준전자문서를 개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법 제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이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만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 6. 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신설 2023. 6. 7.>

1. 위탁업무의 내용 및 범위
2. 위탁업무의 수행방법
3.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탁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를 통한 민원사무 및 항만건설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표준서식과 표준전자문서를 개발해야 한다.<개정 2023. 6. 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23. 6. 7.>

제35조(금지행위)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항만구역 또는 항만시설에서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 3. 11.>

1. 정당한 사유 없이 토석(土石) 또는 자갈을 채취하거나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으로서의 포획·채취로 한정한다) 또는 양식하는 행위
2. 수질오염 등으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발생시키는 행위
3. 준설 토사(土砂)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제36조(환경실태조사의 대상지역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항만구역에 대한 환경실태조사(이하 “환경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지역은 항만구역 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군항의 육상구역과 수역을 제외한 구역으로 한다.

② 환경실태조사는 제1항에 따른 대상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음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37조(환경실태조사의 절차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실태조사의 방법 등을 포함하는 항만구역 환경실태 조사계획(이하 이 조에서 “조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조사계획의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사계획에 따라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환경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라 해당 항만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및 정비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해운법」 및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등록 등을 받아 항만구역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항만사업자”라 한다)가 관리·운영하는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항만시설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환경실태조사 결과를 해당 항만사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38조(시설장비의 범위)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별표 5의 시설장비를 말한다.

제39조(검사의 면제) ①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시행하는 같은 조 제1호가목에 따른 감리

3.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인력과 시설이 투입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의 대상인 시설장비는 별표 5 제9호 및 제16호의 시설장비로 한정한다.

제40조(항만시설의 기술기준)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
 2. 항행 보조시설
 3. 하역시설
 4.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기술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만시설
- ② 법 제36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기술기준의 검증 및 평가에 필요한 검증실험, 시험시공 및 관련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와의 협력 업무를 말한다.
- ③ 법 제3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협회를 말한다.<개정 2023. 6. 7.>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에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범위, 운영방법,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범위, 사용 등에 관해 협회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41조(항만시설 안전점검의 실시) ①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이하 이 조에서 “정기안전점검등”이라 한다)의 실시시기 등은 별표 6과 같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안전점검등의 실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항만건설장비) 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건설장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비를 말한다.

1. 기중기
2. 준설기
3. 항타기(杭打機: 해머나 동력을 사용하여 말뚝을 박는 기계)
4. 지반개량기

제43조(항만건설장비의 검사업무 위탁) ① 「선박안전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 등업무를 대행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급법인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항만건설장비의 검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기관
2.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

- ②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위탁한 기관의 명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44조(항만시설의 사용)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리청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2. 7. 4.>

1. 신청인의 성명·생년월일 및 주소
2. 사용목적
3. 사용하려는 항만시설의 위치·명칭 및 면적·길이 등 규모
4. 사용기간

②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리청과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항만시설 임대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리청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2. 7. 4.>

③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항만시설운영자(법 제104조에 따라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항만시설 임대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7. 4.>

④ 법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임대계약자”라 한다)의 승낙을 받아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항만시설 사용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임대계약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임대계약자는 당초 임대한 항만시설의 전부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운영권 일체를 행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에 관한 임대기간, 승낙기간 및 그 요율(料率)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정한다.

⑥ 임대계약자는 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사용승낙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신고(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45조(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12. 29.>

1. 행정 목적을 위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외국과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의 군함, 행정선, 탐사선 또는 실습선 등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그 선박소유자
3. 선박을 수리하기 위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 「해운법」 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4.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해운 또는 항만 관련 비영리법인
5. 선원 및 항만근로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선박시설을 사용하는 선원의 단체 또는 항만근로자의 단체
6. 어민들의 사업수행을 위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7.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건설에 사용된 총사업비를 보전하기 위해 해당 항만시설 외의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항만공사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의 관할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
- 가. 관리청이 발주한 항만개발사업을 시공하는 자
- 나.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는 항만시설의 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허가를 받은 비관리청
9.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의 관리·운영을 위해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의 범위·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관리청과의 협의를 거쳐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정한다.<개정 2020. 12. 29.>
- ③ 법 제42조제2항에서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운법」 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운대리점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6조(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료
2. 화물료
3. 여객터미널 이용료
4. 항만시설 전용 사용료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요율은 원활한 항만물류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의 종류별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비관리청의 사용료 징수기간)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제5장 항만배후단지

제1절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등

제48조(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① 법 제4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에 필요한 용지(用地)의 면적 및 물동량 등 항만배후단지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2.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을 위해 항만구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3. 용수·에너지·교통·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4. 하수도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자연경관 및 자연생태계 보전 등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 ② 법 제4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시설 용지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용지의 수요·공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자료 또는 협조사항의 내용과 제출기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해당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시한다.

제49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변경 등) ① 법 제4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1. 항만배후단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
 2. 항만배후단지 부지이용계획의 시설용도별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
 3.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주체의 변경
- ② 법 제4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하는 주요 시설에 대한 지원계획
 2. 환지(換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환지계획

제50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및 처리 절차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이하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안 내용이 법령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
 2.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항만구역에 대해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수립 중인 경우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안을 반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각 호의 기관(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이라 한다)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받은 연구기관은 의뢰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적정 사업비·수익률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조건에 관해 해당 제안서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연구기관이 제안서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검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제안된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추진할 것인지 여부 등 해당 제안에 대한 처리 결과를 제4항에 따라 연구기관으로부터 검토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안된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안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 외의 제3자가 다른 제안을 할 수 있도록 90일 이상의 응모기간을 정하여 해당 제안내용을 관보와 둘 이상의 일간신문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가 제출된 경우 그 제안서가 접수된 날부터 제6항에 따른 제안내용의 공고 전까지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안내용의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최초 제안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을 공고해서는 안 된다.

⑨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 적정 사업비·수익률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조건에 관해 해당 제안내용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고, 최초 제안자는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최초의 제안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⑩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3자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제안서를 제출한 때에는 최초 제안서(최초 제안자가 변경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변경 제안서를 말한다)와 제3자의 제안서를 검토·평가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안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둘 이상의 협상대상자와 그 순위를 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안서를 검토·평가할 때에 최초 제안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1. 최초 제안자가 변경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총평가점수의 10퍼센트
2. 해양수산부장관이 제9항에 따라 최초 제안자의 제안내용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최초 제안자가 이에 따른 변경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총평가점수의 5퍼센트

⑪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다른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해야 한다.

⑫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0항 또는 제11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상대상자를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안에 대한 평가와 협상대상자와의 협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1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공모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안(이하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안”이라 한다)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그 응모기간을 9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공고 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개요
2.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평가계획
3. 공모 참가자격 및 일정
4.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5.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안 작성지침
6. 그 밖에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안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모에 응모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출된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안을 평가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안을 채택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채택된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인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52조(항만배후단지 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 ①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항만배후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목적
3.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4. 항만배후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6. 시설의 배치계획
7.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에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부목록 및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형도면
9.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하는 주요 시설에 대한 지원계획
10.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
11.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3호·제7호 및 제10호의 사항이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할 때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별도로 고시할 수 있다.

제53조(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 ① 법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 ②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천재지변과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동을 말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2절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제54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법 제5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6.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②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2. 7. 4.>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3.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5.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부동산신탁회사
6.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③ 법 제5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이란 법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5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시행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스스로 변경 또는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를 지정(제50조제1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지정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사업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사업구역의 위치
4. 지정·지정취소 또는 변경의 사유

제55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7. 4.>

1. 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
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토지의 용도를 기록한 지도를 말한다)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4.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자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5.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 및 이에 따른 조치 계획(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 및 이행 계획서(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사업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에 대한 법 제61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계획서를 포함한다)
9. 항만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이전·철거·귀속·이관 및 양여 등에 관한 조서
10. 존치하려는 시설물의 명세서
11. 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2.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피해영향조사서

② 법 제51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성할 토지의 단계별 확보계획
2.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단계별 시행계획

③ 법 제5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2.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측량 착오 등에 따라 사업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결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기본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④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중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의견을 듣기 위해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 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개요
5. 사업시행기간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제56조(공공시설)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7. 4.>

1. 항만배후단지의 진입도로 및 간선도로
2. 항만배후단지 안의 공원 및 녹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 및 녹지를 말한다)
3. 용수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하수도시설, 전기·통신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는 토지 및 항만시설 중 공공시설 용지

제57조(선수금)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법 제53조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이 조에서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선수금”이라 한다)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조성토지등의 가격·면적·위치·상태·이용 방법 등에 대해 해당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58조(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의 일부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조성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의 공급계획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급대상 원형지의 위치·면적 및 공급 목적
2.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형지개발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원형지 인구 수용 계획, 토지이용 계획, 교통처리 계획, 환경보전 계획,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및 그 밖의 원형지 사용계획 등을 포함하는 원형지 개발계획
4. 원형지 사용조건
5. 예상 공급가격 및 주요 계약조건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원형지 공급계획이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원형지 공급계획을 승인해야 한다.

③ 법 제5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54조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④ 법 제54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59조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한 날부터 5년
2. 원형지 공급 계약일부터 10년

⑤ 법 제54조제6항 단서에서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란 원형지를 다음 각 호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1. 임대주택 용지
2. 기반시설 용지
3. 그 밖에 원형지개발자가 직접 조성하거나 운영하기 어려운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⑥ 사업시행자는 법 제54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원형지 개발자에게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한 후, 원형지개발자가 시정하지 않으면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개발자는 사업시행자의 시정 요구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⑦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⑧ 원형지의 공급가격은 원형지의 감정가격(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에 사업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⑨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 범위는 원형지 공급계약으로 정하되, 원형지 조성을 위한 인가·허가 등의 신청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는 사업시행자가 담당한다.

제59조(준공확인의 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2. 7.>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신·구 지적대조도 및 시설의 대비표
6. 총사업비 명세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할 때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이 승인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는지에 대해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60조(준공 전 사용신고) 사업시행자는 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른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 전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 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2.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3.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제61조(공사완료의 공고사항) ① 법 제59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
3.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지의 위치
4.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제62조(귀속 대상 외의 공공시설) 법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2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

제63조(토지의 매도청구) 법 제61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제55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계획서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매도청구에 관한 계획이 명시된 토지를 말한다.

제64조(조성토지의 분양·임대 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조성하여 취득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조성토지”라 한다)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분양·임대 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성토지를 취득한 후 30일이 지나기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7. 4.>

1.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조성토지의 위치·면적 및 용도
 2. 분양 또는 임대 대상자의 자격 요건 및 선정 방법
 3. 분양 또는 임대의 시기·방법 및 조건
 4. 조성토지의 가격결정 기준
 5. 조성토지의 분양 또는 임대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가. 분양 또는 임대 공고의 방법
 -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 다. 조성토지의 위치·면적 및 용도(용도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을 포함한다)
 - 라. 분양 또는 임대의 시기·방법 및 조건
 - 마. 분양 또는 임대 가격
 - 바. 분양 또는 임대 신청의 기간 및 장소
 - 사. 분양 또는 임대 신청 자격
 - 아. 분양 또는 임대 신청 시의 첨부서류
 6. 그 밖에 조성토지의 원활한 분양 또는 임대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②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와 관련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목적,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및 제1항에 따른 분양·임대 계획서에 따라 조성토지를 분양 또는 임대해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제5호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 7. 4.>

제65조(개발이익의 재투자) 사업시행자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개발이익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로 한다.

제66조(입주자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입주자협의회”라 한다)는 그 구성 당시 해당 사업구역의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의 75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 ② 입주자협의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입주자협회의회의 회의는 규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주자협회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입주자협회의회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3절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운영

제67조(관리지침의 내용 등) ① 법 제65조제1항 전단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의 기본원칙
 2.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3.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의 선정 절차·시기·방식·기준 및 선정계획 등 입주기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와의 입주계약 체결·해지, 입주기업체별 임대 면적, 임대료 및 입주의 실시 등 입주기업체의 입주에 관한 사항
 5. 분양된 용지의 양도·양수 등 입주기업체의 준수사항
 6.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의 사업계획 제출·변경, 사업실적 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7. 법 제68조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1종 항만배후단지 공동시설의 유지·관리, 출입 등 1종 항만배후단지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1종 항만배후단지 특화구역(항만별 특성을 고려하여 유사 산업을 집적화하고 특성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1종 항만배후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등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업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
- ② 법 제6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외에는 관리지침의 변경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제68조(관리기관의 지정·변경절차 및 시기)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6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지정서를 해당 관리기관에 지체 없이 발급하고, 지정 사실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관리기관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관리대상인 1종 항만배후단지의 명칭·위치·면적 및 관리시설 등의 현황
3. 관리기관 지정일 또는 변경지정일

② 법 제66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관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1종 항만배후단지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계획서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의 조성이 완료되기 전까지 관리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제69조(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작성) ① 관리기관은 법 제68조에 따라 매년 관할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법 제68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0조(입주자격) ① 법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입주계약일부터 3년을 말한다.

- ②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제운송주선, 국제선박거래, 포장, 보수, 가공 또는 조립 사업 등 복합물류 관련 사업
2. 선박(선박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포함한다)의 수리, 정비 및 조립 사업 등 국제물류 관련 사업
3. 연료, 식수 및 선식(船食) 등 선박 용품의 공급업
4. 물류시설 관련 개발업 및 임대업

- ③ 법 제69조제1항제2호에서 “매출액 대비 수출입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입주기업체 선정 공고일(수의계약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입주기업체 선정 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계약 체결 예정일을 말한다) 직전 3년의 기간 중 총 매출액 대비 수출입액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개정 2025. 3. 11.>

- ④ 법 제69조제1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제조업과 제6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신설 2021. 5. 25.>

- ⑤ 법 제69조제1항제3호에서 “외국인투자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해당 외국인투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1. 5. 25.>

- ⑥ 법 제6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수출입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 입주기업체 선정 공고일(수의계약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입주기업체 선정 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계약 체결 예정일을 말한다) 직전 3년의 기간 중 총 매출

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개정 2021. 5. 25., 2025. 3. 11.>

1. 전자상거래업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전기통신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정보서비스업
6. 연구개발업
7.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⑦ 법 제69조제1항제5호에서 “수출입거래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입주기업체 선정 공고일(수익계약을 입주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입주기업체 선정 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계약 체결 예정일을 말한다) 직전 3년의 기간 중 총 매출액 대비 수출입거래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개정 2021. 5. 25., 2025. 3. 11.>

⑧ 법 제6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8항 각 호의 업종 및 이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1. 5. 25.>

⑨ 법 제6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1. 5. 25.>

1. 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
2. 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⑩ 법 제6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1. 5. 25.>

1.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을 것
2.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입주하고 남은 토지의 면적이 법 제51조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상의 항만배후단지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일 것

⑪ 관리기관은 제10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추가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를 입주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5. 25., 2022. 7. 4.>

제71조(우선입주) ① 법 제70조제2호에 따라 우선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입주기업체 선정 공고일 직전 1년 동안의 수출액이 해당 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40 이상인 자로 한다. <개정 2024. 5. 28.>

② 법 제70조제3호에 따라 우선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법 제6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으로서 국내복귀 이전 1년 동안의 총매출액에서 국내로의 수출액

을 제외한 매출액의 비중이 100분의 40 이상인 자로 한다.<개정 2024. 5. 28.>

[전문개정 2021. 5. 25.]

제72조(입주계약의 체결 등)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입주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입주계약에 따른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상의 세세분류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또는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의 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그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3조(입주계약이 해지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① 법 제7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이하 이 조에서 “입주계약해지자”라 한다)가 1종 항만배후단지에 소유하는 토지나 공장·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양도하려면 양도계획서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입주계약해지자는 그 입주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입주자격이 있는 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해 경매나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절차가 진행된 날은 전단에 따른 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③ 입주계약해지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분신청서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처분신청서를 받은 관리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매각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 양수인을 선정해야 한다.

⑤ 입주계약해지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양수인을 추천받으면 지체 없이 양도에 관한 협상을 시작하여 그 추천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74조(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법 제7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수한 자는 그 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75조(이자 및 비용) 법 제74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양도할 1종 항만배후단지 토지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양도할 1종 항만배후단지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그 밖의 제세공과금. 다만, 1종 항만배후단지의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추정된 세금은 제외한다.

3. 양도할 1종 항만배후단지 토지의 유지·보존 또는 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

제76조(경매 등에 의해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법 제75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체결하려는 자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계약 체결을 신청해야 한다.

제77조(공동시설의 관리비 등 징수) ①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공동시설의 관리·운영비는 각 입주기업체가 공동시설을 이용하여 얻는 수익의 정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별로 수익의 정도를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입주기업체의 건물면적·대지면적 또는 종업원의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기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6. 7.>

② 관리기관은 공동시설의 관리·운영비를 1종 항만배후단지 운영상황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장 항만에 관한 비용 등

제78조(비용의 보조 등)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선도로의 건설비
2. 녹지의 건설비
3. 이주대책사업비
4. 항만시설용지의 조성비 및 매입비
5. 도로·통신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비용
6. 사업구역 밖의 간선도로·광역상수도시설 등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중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비용
7. 그 밖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위해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 및 철도
2. 용수공급시설 및 통신시설
3. 하수도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항만배후단지 안의 공동구(共同溝)
5. 집단 에너지공급시설
6. 그 밖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위해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79조(전기시설 등의 설치)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의 설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의 설치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제7장 감독

제80조(행정처분)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처분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명칭, 위반 내용, 행정처분 내용 및 기간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법 제8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납부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을 말한다.

제81조(반출 통보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86조제1항 본문에 따라 화물의 반출 통보 또는 독촉통보를 할 때에는 해당 화물의 품목·수량, 최초 장치일(藏置日) 및 반출기한과 반출하지 않을 때의 조치내용 등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법 제8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고는 제1항에 따른 통보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항만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2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제82조(장기체류화물의 매각)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8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독촉통보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반출하지 않은 화물(이하 “장기체류화물”이라 한다) 중 제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을 제외한 화물은 매각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제1항에 따른 매각은 공매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해당 물건의 가액이 공매비용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본문에 따라 공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9.>

1. 공매할 화물의 명칭 및 내용
2. 공매의 장소 및 일시
3. 입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매각처분으로 취득한 금액에서 매각비용, 각종 세금과 공과금 및 항만시설 사용료를 뺀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공탁법」에 따라 공탁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기체류화물의 매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0. 12. 29.>

제83조(장기체류화물의 폐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장기체류화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은 폐기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9.>

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2. 부패 또는 변질된 물품
3. 실용시효가 지난 물품
4. 상품가치를 상실한 물품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물품

제84조(장기체류화물의 국가 또는 시·도 귀속)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2조에 따라 매각되지 않은 장기체류화물은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시켜야 한다. <개정 2020. 12. 29.>

[제목개정 2020. 12. 29.]

제8장 공용부담 및 손실보상

제85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환지하여 주려는 경우 미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1. 환지의 대상이 되는 종전 토지의 가액은 보상공고 시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위해 제시한 금액으로 하고, 환지의 가액은 해당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
2. 환지면적은 종전의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 여건 및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토지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을 늘리거나 줄일 것
3. 종전의 토지가액과 환지가액 간의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할 것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에서 환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명칭 및 구역
2. 항만배후단지에 있는 토지에 대해 환지를 실시한다는 뜻
3. 환지 조건
4. 환지 신청 기간 및 협의 기간

③ 항만배후단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환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환지 신청 기간에 환지신청서에 토지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환지 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협의 기간에 환지를 신청한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야 한다.

제86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위탁사업의 사업지
2. 위탁사업의 종류·규모·금액 및 기간
3. 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위탁자가 부동산·기자재 또는 근로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명칭 등 협약 체결사실과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법 제9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 12. 8.>

1.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④ 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제87조(재결의 신청) ①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제9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이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고, 그 밖의 것은 같은 조에 따른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제1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9.>

1. 재결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손실 발생의 사실
3.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비관리청 및 사업시행자가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재결신청자가 산출한 손실액의 명세
4. 협의의 경과

제9장 보칙

제88조(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행정청은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3조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9.>

제89조(행위 제한 등) ①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8. 26., 2023. 1. 10.>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인공 구조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 땅깎기)、성토(盛土: 흙쌓기)、정지(整地: 땅고르기)、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및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土石)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 「수산업법」 제2조제8호、제17호에 따른 입어、유어(遊漁)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
6. 토지분할
7.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이동이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8.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② 법 제97조제2항제2호에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3. 경작지가 아닌 토지에서의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植栽)

③ 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가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항만배후단지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사항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0조(인가·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인가、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이하 “일괄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법 제98조제1항 각 호의 인가、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가、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제출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괄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개정 2020. 12. 29.>

제91조(권리·의무의 이전) 법 제101조제1항 단서에서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상속
2. 법인의 인수·합병
3. 법원의 재판

제92조(정관의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93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 7. 4., 2023. 6. 7.>

1. 법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항만시설의 지정·고시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
3. 법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같은 조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변경허가 및 그 통지
4. 법 제9조제3항제5호에 따른 타당성 검토
5.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 및 허가의 고시
6. 법 제10조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변경, 공고, 승인, 변경승인, 신고의 수리, 승인 신청 또는 신고 기한의 연장
7.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 대한 통보 및 세부목록의 별도 작성·공고

- 7의2. 법 제11조 단서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준공기한 연기
8.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완료의 공고
9.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준공확인 및 준공확인증명서의 발급
10.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신고의 수리
11. 법 제13조에 따른 부수공사의 시행
12. 법 제14조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대행
13. 법 제1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만시설의 국가 귀속 조치 및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
14. 법 제16조에 따른 토지의 매도청구에 따른 매각 등의 조치
15.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임대 허가
16.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무상사용 허가
17. 법 제20조에 따른 항만의 관리 및 항만운영세칙의 제정·운영
18. 법 제21조에 따른 분구의 설정
19. 법 제22조에 따른 항만대장의 작성·비치
20. 법 제23조에 따른 항만관리법인의 지정·감독
21.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의 설정 및 등록·변경등록
22. 법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입통제, 출입통제의 해제 및 공고
23.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의 설치·철거 신고의 수리
24. 법 제33조에 따른 시설장비의 검사 및 수수료의 징수
25. 법 제34조에 따른 검사의 면제
26.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조치
27. 법 제41조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및 항만시설 사용신고의 수리
28. 법 제42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 사용료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의 지급,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의 사용료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신고의 수리
29. 법 제43조(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의 사용방법, 사용료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신고의 수리 및 항만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명령
30. 법 제51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의견수렴, 고시 및 관계 서류의 송부
31. 법 제58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준공확인,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보완시공 등 명령 및 준공 전 사용신고의 수리
32. 법 제59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
33. 법 제61조에 따른 토지의 매도청구에 따른 매각 등의 조치
34. 법 제82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강제징수

35. 법 제8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명령 및 고시(권한이 위임된 사항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명령 및 고시로 한정한다)
36. 법 제84조에 따른 처분 등
37. 법 제85조에 따른 보고명령 및 출입검사
38. 법 제86조에 따른 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39. 법 제87조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제거
40. 법 제88조에 따른 노무 제공의 요청, 토지 등의 일시 사용, 공작물 등의 변경·제거 및 흙·돌 등의 사용·수용
41. 법 제89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사용
42. 법 제93조 또는 제94조에 따른 손실의 보상
43. 법 제95조에 따른 손실의 보상 또는 손실 방지 시설의 설치
44. 법 제9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45. 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6. 법 제100조에 따른 청문(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청문으로 한정한다)
47. 법 제101조에 따른 권리·의무 이전의 인가(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인가로 한정한다)
48. 법 제105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49. 법 제11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같은 조 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6호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50. 제24조제2항 및 제3항(제27조제2항 및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및 토지가액의 평가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위임받은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9., 2022. 7. 4.>
 1. 법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항만시설의 지정·고시
 2. 삭제<2022. 7. 4.>
 3. 삭제<2022. 7. 4.>
 4. 삭제<2022. 7. 4.>
 5. 삭제<2022. 7. 4.>
 6. 법 제113조제1항제11호, 제12호(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법 제6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관리기관의 자료제출 요청 및 출입검사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3호(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측량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4호(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측량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1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94조(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103조제1호에 따른 국제협력사업의 발굴, 관리, 조사 및 정보 제공
2. 법 제103조제2호에 따른 인적 교류 및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3. 법 제103조제3호에 따른 해외항만개발사업 진출 자문 및 기술지원
4. 법 제103조제4호에 따른 항만 관련 정보의 국제적 교환 및 홍보 업무 중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5. 법 제103조제5호에 따른 항만 관련 국제기구 및 원조 관련 기관과의 협력 업무 중 협력사업 발굴 및 국제행사 개최
6. 법 제103조제6호에 따른 항만 및 항만 산업 관련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

제95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지정취소 및 변경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3. 7.]

제10장 벌칙

제9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부칙 <제30876호, 2020. 7.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변경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안전점검 실시 기산일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5637호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4년 9월 24일 전에 설치된 항만시설에 대해 별표 6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2014년 9월 24일을 항만시설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본다.

제6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

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단계별 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항만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행허가를 신청한 항만공사에 대해서는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만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다.

제8조(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을 위한 시설의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항만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만공사실시계획이 신고된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만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다.

제9조(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의 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9138호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8년 9월 4일 전에 비관리청이 시행허가를 신청한 항만공사에 대해서는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다.

제10조(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항만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비관리청이 시행허가를 신청한 항만공사에 대해서는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다.

제11조(총사업비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25298호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4년 4월 8일 전에 비관리청이 시행허가를 신청한 항만공사에 대해서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9조에 따른다.

② 대통령령 제29138호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8년 9월 4일 전에 비관리청이 시행허가를 신청한 항만공사에 대해서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9조에 따른다.

제12조(귀속 항만시설의 무상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9138호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8년 9월 4일 전에 비관리청이 시행허가를 신청한 항만공사에 대해서는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른다.

제13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제안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항만법 시행령」 제58조제5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보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50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만법 시행령」 제58조제6항에 따른다.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항만개발사업의 수립시기란 중 “항만공사실시계획”을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으로 한다.

②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마목의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 시기란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할 때”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로 한다.

③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항만법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4호 중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2) 및 (4)”를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2) 및 4)”로 한다.

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4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및 「항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⑥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1호마목 중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을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으로 한다.

⑦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자목 중 “「항만법」 제16조”를 “「항만법」 제24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8호 중 “「항만법」 제16조”를 “「항만법」 제24조”로 한다.

⑧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항만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를 “「항만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항만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를 “「항만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로 한다.

⑨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서목 중 “항만공사”를 “항만개발사업”으로, “법 제42조”를 “법 제45조”로 한다.

⑩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나목 중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을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로, “같은 목 (4)”를 “같은 목 4)”로 한다.

⑪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1) 중 “「항만법」 제29조의3제1항”을 “「항만법」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⑫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5호 중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를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로 하고, 같은 비고 제6호 중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를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로 한다.

별표 13 비고 제2호 중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를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로 한다.

⑬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다목 중 “같은 조 제7호”를 “같은 조 제10호”로 한다.

별표 5 제79호 중 “항만공사”를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4제2항제3호 중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을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으로 한다.

⑮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0호 중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를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로 한다.

별표 1 제1호마목3) 중 “「항만법」 제41조”를 “「항만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바목2) 중 “항만공사실시계획”을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으로 한다.

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법」 제16조”를 각각 “「항만법」 제24조”로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1호 중 “항만공사”를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99호 중 “항만공사실시계획”을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으로, “항만공사의 준공”을 “항만개발사업의 준공”으로 한다.

1(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1항제5호 중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을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으로 한다.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라목1) 중 “「항만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항만공사의 고시”를 “「항만법」 제9조제9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고시”로 하고, 같은 목 3) 중 “항만공사”를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1호 중 “「항만법」 제42조”를 “「항만법」 제45조”로 한다.

2@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 중 “「항만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을 “「항만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으로 한다.

2#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물양장(物揚場)”을 “소형선 부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항만법 시행령」 제13조”를 각각 “「항만법 시행령」 제18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제8호 중 “항만공사실시계획”을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으로, “항만공사의”를 “항만개발사업의”로 한다.

제29조의3제1호 중 “「항만법」 제88조제1항”을 “「항만법」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2\$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항만법」 제19조제2항”을 “「항만법」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 중 “「항만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을 “「항만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 중 “항만공사”를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2%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항만법」 제30조”를 “「항만법」 제42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를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로 한다.

2^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3 제1호가목3) 중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을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로 하고, 같은 호 다목2) 중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을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로 한다.

2&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나. 「항만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 「항만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
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기 전 |
|---------------------------------------|---|

별표 비고 제1호가목 중 “「항만법」 제41조제1항”을 “「항만법」 제4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4호마목 중 “「항만법」 제41조제3항 단서”를 “「항만법」 제44조제4항 후단”으로 한다.

2*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항만법」 제16조”를 “「항만법」 제24조”로 한다.

2(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3호 중 “「항만법」 제41조”를 “「항만법」 제44조”로 한다.

3)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5 중 “「항만법」 제30조제5항 단서”를 “「항만법」 제42조제1항 단서”로 한다.

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나목 협의 요청시기란의 가) 및 같은 호 다목 협의 요청시기란의 가) 중 “「항만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항만공사”를 각각 “「항만법」 제9조제9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만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0977호, 2020. 8. 26.>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 까지 생략

3#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4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양식업권”으로 한다.

제8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제19호에 따른 입어·유어(遊漁)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

3\$ 부터 3&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1243호, 2020. 12. 8.>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 까지 생략

3#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부칙 <제31332호, 2020. 12. 29.>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38호, 2021. 2. 9.>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준설공사의 경우: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해양정보 사본

⑮부터 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1705호, 2021. 5. 25.>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86호, 2021. 9. 1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 까지 생략

2%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고, 제25조제1항 제5호가목 중 “건설기술용역비”를 “건설엔지니어링비”로 한다.

2^ 생략

부칙 <제32763호, 2022. 7.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성토지의 분양·임대 계획서의 제출 및 분양·임대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하는 조성토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225호, 2023. 1. 10.> (수산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 까지 생략

4!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1항제5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제19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8호·제17호”로 한다.

4@ 부터 4*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33321호, 2023. 3. 7.>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15호,2023. 6.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를 관리·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약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체결한 업무 위탁 협약으로 본다.

부칙 <제34153호,2024. 1. 16.>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다목 중 “ 「해사안전법」 제15조제5항 ”을 “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제5항 ”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34480호,2024. 4. 30.>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91호,2024. 5. 7.>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 까지 생략

1&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7호 중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을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로, “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를 “ 매장유산 지표조사 ”로, “ 문화재 보존 ”을 “ 국가유산 보존 ”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34533호, 2024. 5. 28.>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34550호, 2024. 6. 4.>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4) 까지 생략

4!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커목의 위치란, 같은 호 터목의 위치란, 같은 호 퍼목의 위치란, 같은 호 허목의 위치란 및 같은 호 고목의 위치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 제2호터목의 위치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4@ 부터4\$ 까지 생략

부칙 <제35089호, 2024. 12. 2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3@ 까지 생략

3#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자목의 위치란 및 수상구역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바목의 위치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3\$ 생략

부칙 <제35246호, 2025. 2. 7.>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1* 까지 생략

1(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 및 제59조제1항제2호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각각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로 한다.

2) 생략

부칙 <제35261호, 2025. 2. 13.>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진단보고서 및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이행 결과(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영향진단의 대상 사업으로 한정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35378호, 2025. 3.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11호, 2025. 10. 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48호, 2025. 12. 30.>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5>까지 생략

<146>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147>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 <제36423호, 2026. 6. 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차목부터 파목까지의 위치란 및 같은 호 파목의 수상구역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사목부터 더목까지의 위치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75>부터 <78>까지 생략

부칙 <제36439호, 2026. 6. 23.>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항만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6. 23.>

항만의 구분·명칭·위치 및 구역(제3조제1항 관련)

1. 무역항

| 항만명 | 위치 | 수상구역 | 육상구역 |
|--------|--------------------------------------|---|---|
| 가. 경인항 | 인천광역시
검단구,
서해구 및
경기도
김포시 | 북위 37도 33분 54.46초, 동경 126도 37분 01.05초 지점과 북위 37도 33분 51.63초, 동경 126도 37분 02.37초 지점을 연결한 선과 북위 37도 33분 00.91초, 동경 126도 35분 50.44초(인천광역시 검단구 오류동 거침도 남단) 지점과 북위 37도 33분 44.56초, 동경 126도 35분 24.90초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해면 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북위 37도 35분 32.50초, 동경 126도 47분 02.47초(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인근)지점과 북위 37도 35분 34.92초, 동경 126도 46분 58.40초 지점을 연결한 선과 북위 37도 35분 59.87초, 동경 126도 47분 59.52초(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인근) 지점과 북위 37도 35분 59.21초, 동경 126도 47분 59.87초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수면(수면 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북위 37도 33분 54.46초, 동경 126도 37분 01.05초 지점과 북위 37도 33분 51.63초, 동경 126도 37분 02.37초 지점을 연결한 선과 북위 37도 34분 25.66초, 동경 126도 45분 22.44초 지점과 북위 37도 34분 28.47초, 동경 126도 45분 32.32초 지점을 연결한 선과 북위 37도 35분 32.50초, 동경 126도 47분 02.47초 지점과 북위 37도 35분 34.92초, 동경 126도 46분 58.40초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운하 수면 |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할 시·도지사 와 협의한 후 중앙항만 정책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고시한 구역 |
| 나. 인천항 | 인천광역시 | 북위 37도 32분 49.84초, 동경 126도 35분 58.13초 지점과 북위 37도 33분 34.44초, 동경 126도 35분 32.37초(인천광역시 검단구 오류동 거침도 남단) 지점을 연결한 선과 북위 37도 35분 36.05 | |

| | | |
|-----------|--|--|
| | | <p>초, 동경 126도 34분 08.57초(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지점에서 북위 37도 34분 44.05초, 동경 126도 33분 20.58초(세어도 북단) 지점 및 북위 37도 32분 04.07초, 동경 126도 30분 52.59초(영종도 북단)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과 북위 37도 26분 47.11초, 동경 126도 29분 10.60초(영종도 남단) 지점에서 북위 37도 21분 41.14초, 동경 126도 26분 26.62초(해녀도) 지점, 북위 37도 18분 56.16초, 동경 126도 28분 49.61초(남장자서) 지점 및 북위 37도 17분 19.17초, 동경 126도 31분 58.59초(대부도 서북단 타구봉 끝단)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다만,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송도에서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사이) 끝단에서 오이도 선착장 끝단, 옥귀도, 군자매립지 선착장 끝단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과 시화호 방조제 및 한화교 내륙쪽 해면은 제외한다.</p> |
| 다. 서울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 <p>마포대교 남단의 북위 37도 31분 48.90초, 동경 126도 55분 55.33초 지점에서 북위 37도 31분 46.94초, 동경 126도 55분 58.45초 지점, 북위 37도 31분 33.49초, 동경 126도 56분 14.90초 지점, 북위 37도 31분 43.76초, 동경 126도 56분 31.39초 지점 및 북위 37도 32분 00.88초, 동경 126도 56분 14.59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면</p> |
| 라. 평택·당진항 | 경기도
평택시 및
화성시,
충청남도
아산시 및
당진시 | <p>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고온리(북위 37도 02분 05.28초, 동경 126도 44분 50.53초 지점)와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성구미리 동단(북위 36도 59분 54.30초, 동경 126도 42분 04.55초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다만, 남양호, 아산호, 삼교호는 제외한다.</p> |

| | | |
|---------------|---------------------|---|
| <p>마. 대산항</p> | <p>충청남도
서산시</p> | <p>대죽리 삼길산 북측 북위 37도 00분 24.29초, 동경 126도 26분 56.63초 지점에서 다음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조도 남단 북위 37도 00분 52.29초, 동경 126도 27분 09.63초 지점 2) 대조도 북단 북위 37도 01분 08.28초, 동경 126도 27분 09.63초 지점 3) 비경도 동남측 북위 37도 01분 16.28초, 동경 126도 25분 54.63초 지점 4) 비경도 서단 북위 37도 01분 28.28초, 동경 126도 25분 19.64초 지점 5) 철도 남단 북위 37도 03분 05.27초, 동경 126도 24분 40.64초 지점 6) 북위 37도 03분 12.27초, 동경 126도 22분 45.65초 지점 7) 북위 37도 01분 52.28초, 동경 126도 18분 34.67초 지점 8) 장안퇴 압초 북위 37도 00분 37.28초, 동경 126도 15분 56.69초 지점 9) 만대 북단 북위 36도 58분 43.30초, 동경 126도 18분 16.68초 지점 10) 자각산 서단 북위 36도 58분 25.30초, 동경 126도 20분 06.67초 지점 |
| <p>바. 태안항</p> | <p>충청남도
태안군</p> | <p>방갈리 북측 북위 36도 54분 19.33초, 동경 126도 13분 21.71초 지점에서 다음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북위 36도 54분 26.33초, 동경 126도 11분 44.71초 지점 2) 북위 36도 53분 50.33초, 동경 126도 10분 48.72초 지점 3) 북위 36도 55분 34.32초, 동경 126도 12분 |

| | | | |
|--------|--------------------|--|--|
| | | 41.71초 지점
4) 북위 36도 55분 26.32초, 동경 126도 14분 33.70초 지점
5) 북위 36도 54분 48.32초, 동경 126도 15분 04.70초 지점 | |
| 사. 보령항 | 충청남도
보령시 | 면화박골 서단(북위 36도 27분 14.52초, 동경 126도 29분 12.63초 지점)에서 월도 동단(북위 36도 24분 36.54초, 동경 126도 28분 10.64초 지점), 원산도 도투머리 산정을 거쳐 북위 36도 19분 08.57초, 동경 126도 26분 51.65초 지점과 보령시 신흥동 서단(북위 36도 19분 28.57초, 동경 126도 30분 03.63초 지점) 및 송도 서단(북위 36도 23분 07.55초, 동경 126도 28분 45.64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과 오천국교 서단(북위 36도 26분 17.53초, 동경 126도 31분 00.62초 지점)과 해독동 동단(북위 36도 26분 24.53초, 동경 126도 30분 44.63초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
| 아. 장항항 | 충청남도
서천군 | 소치곶에서 북위 36도 00분 7.16초, 동경 126도 38분 1.68초 지점, 북위 36도 00분 24.52초, 동경 126도 37분 46.51초 지점 및 북위 36도 00분 33.09초, 동경 126도 39분 47.61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
| 자. 군산항 | 전북특별
자치도
군산시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경포천 서측 끝단(북위 35도 59분 7.81초, 동경 126도 43분 42.68초 지점)에서 소치곶, 북위 36도 00분 7.16초, 동경 126도 38분 1.68초 지점, 북위 36도 00분 24.52초, 동경 126도 37분 46.51초 지점, 북위 36도 00분 00.35초, 동경 126도 21분 30.35초 지점, 북위 35도 55분 04.42초, 동경 126도 21분 30.35초 지점 및 북위 35도 55분 04.42초, 동경 126도 31분 30. | |

| | | |
|--------|----------------------|---|
| | | 57초 지점(새만금제방)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면 |
| 차. 목포항 |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목포시 | <p>영암방조제, 영산강 하구둑, 아래 1)부터 7)까지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및 8)부터 10)까지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p> <p>1) 목포시 산정동 목도 돌출부 남서단 북위 34도 48분 51.19초, 동경 126도 22분 11.72초 지점</p> <p>2) 정주도 남단 북위 34도 48분 48.19초, 동경 126도 21분 33.72초 지점</p> <p>3) 구례도 남단 북위 34도 48분 25.19초, 동경 126도 21분 02.72초 지점</p> <p>4) 장좌도 동북단 북위 34도 47분 41.19초, 동경 126도 20분 25.72초 지점</p> <p>5) 장좌도 동남단 북위 34도 46분 55.20초, 동경 126도 20분 19.73초 지점</p> <p>6) 달리도 동남단 북위 34도 45분 34.21초, 동경 126도 19분 05.73초 지점</p> <p>7) 해남군 화원면 양화리 돌출부 북단 북위 34도 45분 01.21초, 동경 126도 19분 01.73초 지점</p> <p>8) 해남군 화원면 구림리 동북단 북위 34도 43분 47.07초, 동경 126도 19분 47.85초 지점</p> <p>9) 북위 34도 44분 12.71초, 동경 126도 20분 24.91초 지점</p> <p>10) 해남군 산이면 달도 북단 북위 34도 42분 52.23초, 동경 126도 22분 42.71초 지점</p> |
| 카. 완도항 |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완도군 | <p>신지도 상산 산정과 동망봉 산정을 연결한 선 및 신지도 장항곶 서산에서 가미구미 동측 돌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p> |

| | | |
|--------|---------------------------------------|---|
| 타. 여수항 |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여수시 | 여수시 봉산동 북위 34도 43분 49.24초, 동경 127도 43분 57.29초 지점에서 우두리 조선봉, 오동도 동단을 거쳐 북북동 30도 방향으로 1,500미터까지 이은 지점 및 마래산 산정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 파. 광양항 |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양시,
여수시 및
순천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한구미 동단(북위 34도 50분 13.20초, 동경 127도 46분 24.27초 지점)에서 북위 34도 50분 53.20초, 동경 127도 48분 22.26초 지점, 북위 34도 51분 29.19초, 동경 127도 48분 18.26초 지점, 북위 34도 52분 11.19초, 동경 127도 48분 36.26초 지점, 북위 34도 54분 50.61초, 동경 127도 48분 48.73초 지점, 북위 34도 54분 55초, 동경 127도 47분 54초 지점, 소마도 남단(북위 34도 56분 06초, 동경 127도 46분 56초 지점) 및 태인도 동남단(북위 34도 56분 42.16초, 동경 127도 45분 57.27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태인 연륙교(북위 34도 56분 01.16초, 동경 127도 44분 49.28초 지점 및 북위 34도 55분 54.16초, 동경 127도 44분 49.28초 지점), 광양만 철교(북위 34도 55분 44.1초, 동경 127도 41분 58.8초 지점 및 북위 34도 55분 41.9초, 동경 127도 42분 15.1초 지점), 광양시 초남(북위 34도 55분 21.16초, 동경 127도 36분 37.32초 지점)과 광양시 세풍리 남단(북위 34도 55분 35.16초, 동경 127도 35분 55.33초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 하. 하동항 |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남단(북위 34도 56분 25초, 동경 127도 47분 30초 지점)에서 오동도 남단(북위 34도 56분 18초, 동경 127도 47분 20초 지점), 소마도 남단(북위 34도 56분 06초, 동경 127도 46분 56초 지점), 북위 34도 54분 55초, |

| | | |
|---------|----------------------|--|
| | | <p>동경 127도 47분 54초 지점, 외난초도 서단(북위 34도 54분 50초, 동경 127도 48분 57초 지점), 농섬 서단(북위 34도 55분 55초, 동경 127도 49분 31초 지점), 대도 북단(북위 34도 56분 24초, 동경 127도 49분 54초 지점), 광도 서북단(북위 34도 56분 31초, 동경 127도 50분 16초 지점) 및 천석산 서남 돌단(북위 34도 57분 01초, 동경 127도 50분 45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면</p> |
| 거. 삼천포항 | 경상남도
사천시 및
고성군 | <p>사천시 대방동 남방 지점(북위 34도 55분 45.17초, 동경 128도 03분 19.18초 지점)에서 장구도 북단, 신수도 북단, 추도 북단, 신수도 최동단 돌출부(북위 34도 53분 51.18초, 동경 128도 05분 03.17초 지점), 삼천포외항 방파제 서단(북위 34도 54분 00.18초, 동경 128도 06분 09.17초 지점), 외항 방파제 동단(북위 34도 54분 10.18초, 동경 128도 06분 55.16초 지점) 및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북위 34도 54분 16.18초, 동경 128도 07분 04.16초 지점)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면</p> |
| 너. 통영항 | 경상남도
통영시 | <p>나부동산 동단(북위 34도 49분 29.78초, 동경 128도 23분 31.27초 지점)과 해말당단 서단(북위 34도 49분 50.81초, 동경 128도 23분 32.13초 지점)을 연결한 선 및 전송말(북위 34도 49분 34.22초, 동경 128도 26분 29.07초 지점)에서 매일봉(북위 34도 50분 42.21초, 동경 128도 26분 53.06초 지점)을 동남으로 연결한 안의 해면</p> |
| 더. 장승포항 | 경상남도
거제시 | <p>호염산 202미터 산정과 동북 방향 북위 34도 51분 48.21초, 동경 128도 44분 07.97초 지점을 연결한 선안의 해면</p> |

| | | |
|--------|---------------------------|---|
| 러. 옥포항 | 경상남도
거제시 | 능포리 북위 34도 53분 29.20초, 동경 128도 43분 57.97초 지점과 팔랑포 북위 34도 54분 08.19초, 동경 128도 43분 01.97초 지점을 연결한 선안의 해면 |
| 머. 고현항 | 경상남도
거제시 | 중촌돌단(북위 34도 55분 09.19초, 동경 128도 36분 32.01초 지점)에서 열녀봉 삼각점(△)(북위 34도 56분 37.17초, 동경 128도 35분 17.01초 지점), 사두도 북단(북위 34도 54분 54.18초, 동경 128도 33분 50.02초 지점) 및 사곡곶(북위 34도 54분 25.19초, 동경 128도 34분 14.02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면 |
| 버. 마산항 | 경상남도
창원시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덕동동 상대말(북위 35도 08분 36.10초, 동경 128도 35분 51.01초 지점)과 창원시 진해구 동도(북위 35도 08분 54.09초, 동경 128도 36분 36.00초 지점)를 연결한 선이북의 해면 |
| 서. 진해항 | 경상남도
창원시 | 고출산 산정(북위 35도 07분 39.10초, 동경 128도 40분 16.98초 지점)에서 마당서(북위 35도 06분 22.11초, 동경 128도 40분 48.98초 지점) 및 대일산 서단(북위 35도 06분 12.11초, 동경 128도 41분 16.98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면 |
| 어. 부산항 |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창원시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동 신명 남단에서 우도 남동단, 연도 서남단, 가덕도 남측 끝단(북위 34도 59분, 동경 128도 49.5분 지점), 생도 남단, 오륙도 남단, 북위 35도 08분 33.20초, 동경 129도 08분 51.60초 지점, 광안대로 남측 축도부 남단(북위 35도 08분 08.90초, 동경 129도 06분 53.20초 지점) 및 육지 끝단(북위 35도 |

| | | | |
|--------|-------|--|--|
| | | <p>08분 06.00초, 동경 129도 06분 44.00초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중 다음의 해면을 제외한 해면</p> <p>1) 북위 35도 05분 47.13초, 동경 129도 02분 10.87초 지점에서 진북 164도 방향으로 그은 선(영도대교) 및 북위 35도 04분 34.02초, 동경 129도 01분 29.98초 지점과 북위 35도 04분 50.13초, 동경 129도 02분 23.42초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p> <p>2) 선가대(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1동 375-16번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 내) 기부(基部)로부터 정서쪽으로 136미터 떨어진 해상점을 중심으로 하여 건너편 산(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368번지) 정점을 연결하는 일직선상에 있는 육지부와 만나는 지점 안의 해면</p> <p>3) 서중 돌출부(북위 35도 01분 50.00초, 동경 128도 48분 33.40초 지점)와 대안 천수대말 돌출부(북위 35도 01분 27.00초, 동경 128도 48분 17.60초 지점)를 연결한 선 안의 해면</p> | |
| 저. 울산항 | 울산광역시 | <p>북위 35도 28분 39.98초, 동경 129도 24분 52.74초 지점[동대산 삼각점(△) 116지점에서 남방 173도 1,730미터 지점]과 북위 35도 27분 59.00초, 동경 129도 25분 34.70초 지점을 연결한 선과 북위 35도 22분 42.00초, 동경 129도 22분 48.00초 지점까지 북위 35도 25분 06.04초, 동경 129도 24분 52.37초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경 5,436미터 선 및 북위 35도 24분 11.01초, 동경 129도 22분 06.00초 지점과 북위 35도 24분 11.01초, 동경 129도 21분 13.76초 지점을 순차</p> | |

| | | |
|-----------|----------------|---|
| | | 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과 돌안산 최동단 북위 35도 30분 58.97초, 동경 129도 26분 46.73초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경 2,000미터 원 내의 해면 |
| 처. 포항항 | 경상북도
포항시 | 용한리 동단(북위 36도 07분 15.72초, 동경 129도 24분 58.71초 지점)에서 북위 36도 07분 15.72초, 동경 129도 29분 44.69초 지점 및 술미 북위 36도 01분 23.76초, 동경 129도 29분 44.69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 커. 호산항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비화진 돌출부(북위 37도 12분 41.87초, 동경 129도 20분 51.36초 지점)로부터 정동으로 2,600m 지점(북위 37도 12분 41.87초, 동경 129도 22분 36.00초 지점)과 고포측 돌출부(북위 37도 08분 42.00초, 동경 129도 21분 52.20초 지점)로부터 정동으로 3,000m 지점(북위 37도 08분 42.00초, 동경 129도 23분 55.20초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 터. 삼척항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북위 37도 26분 02.18초, 동경 129도 11분 25.73초 지점에서 삼척시 오분동 고성산 산정 97미터, 북위 37도 25분 50.18초, 동경 129도 12분 06.73초 지점, 북위 37도 26분 15.18초, 동경 129도 12분 06.72초 지점 및 북위 37도 26분 29.18초, 동경 129도 11분 33.73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 퍼. 동해·묵호항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동해시 냉천 동단에서 북위 37도 31분 10.29초, 동경 129도 8분 31.55초 지점과 북위 37도 31분 20.00초, 동경 129도 8분 43.79초 지점과 북위 37도 31분 19.71초, 동경 129도 12분 03.74초 지점과 북위 37도 28분 54.00초, 동경 129도 12분 03.35초 지점 및 동해항 남쪽 호안 끝단을 순차 |

| | | |
|---------|--------------|---|
| | | 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과 어달동 오도 동방 북위 37도 33분 22.13초, 동경 129도 07분 16.75초 지점에서 진방위 90도로 1,350미터 지점과, 북위 37도 32분 10.13초, 동경 129도 06분 53.75초 지점에서 진방위 90도로 1,900미터 지점을 각각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 허. 옥계항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주수천 하구의 북방파제 서단에서 진방위 65도 연장선상 2,550미터 지점, 진방위 90도로 북위 37도 38분 10.09초, 동경 129도 05분 21.75초 지점, 용바위 남단으로부터 진방위 90도로 북위 37도 36분 58.10초, 동경 129도 05분 21.75초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 고. 속초항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속초시 동북방 삼각점(△) 36지점(북위 38도 12분 47.84초, 동경 128도 36분 00.88초 지점)과 조도 동단을 연결한 선과 조도 남단에서 북위 38도 11분 35.35초, 동경 128도 36분 07.39초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 노. 제주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연육방파제 기점에서 북위 33도 31분 21.70초, 동경 126도 31분 39.69초 지점, 북위 33도 31분 58.70초, 동경 126도 32분 20.69초 지점, 북위 33도 31분 59.70초, 동경 126도 33분 43.68초 지점 및 곤을동 북단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 도. 서귀포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삼매봉 남동단 해안선(북위 33도 14분 19.82초, 동경 126도 33분 19.69초 지점)에서 북위 33도 14분 10.82초, 동경 126도 33분 17.69초 지점, 북위 33도 13분 51.82초, 동경 126도 33분 39.69초 지점, 북위 33도 13분 51.82초, 동경 126도 34분 00.69초 지점, 북위 33도 14분 07.82초, 동경 126도 34분 21.69초 지점 및 북위 33도 14분 26.82 |

| | | | |
|--|--|--|--|
| | | 초, 동경 126도 33분 58.69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과 강정항 동방파제 단부 북위 33도 13분 37.68초, 동경 126도 28분 41.51초 지점에서 북위 33도 13분 29.66초, 동경 126도 28분 46.48초 지점, 북위 33도 13분 18.93초, 동경 126도 28분 59.39초 지점, 북위 33도 13분 19.34초, 동경 126도 29분 41.00초 지점, 북위 33도 13분 30.90초, 동경 126도 29분 38.88초 지점, 북위 33도 13분 37.67초, 동경 126도 29분 30.55초 지점, 북위 33도 13분 49.10초, 동경 126도 29분 26.84초 지점 및 북위 33도 13분 52.57초, 동경 126도 29분 26.97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
|--|--|--|--|

2. 연안항

| 항만명 | 위치 | 수상구역 | 육상구역 |
|---------|---------------------|--|--|
| 가. 용기포항 | 인천광역시
용진군
백령면 | 북위 37도 57분 26.86초, 동경 124도 44분 46.16초(용기원산 동단) 지점에서 북위 37도 56분 45.87초, 동경 124도 44분 06.16초 지점 및 북위 37도 57분 10.86초, 동경 124도 43분 20.17초(사곶해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해양수산부장관이 관할 시·도지사
와 협의한
후 중앙항만
정책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고시한 구역 |
| 나. 연평도항 | 인천광역시
용진군 | 동방파제 기점에서 북위 37도 39분 14.27초, 동경 125도 42분 57.26초 지점 및 북위 37도 | |

| | | |
|---------------|-----------------------------------|---|
| | 연평면 | 39분 09.95초, 동경 125도 42분 43.60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 다. 격렬비
열도항 |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 북위 36도 37분 32초, 동경 125도 33분 41초 지점에서 북위 36도 37분 32초, 동경 125도 33분 53초 지점, 북위 36도 37분 21초, 동경 125도 33분 53초 지점 및 북위 36도 37분 21초, 동경 125도 33분 40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 라. 대천항 | 충청남도
보령시 | 송도 서단(북위 36도 23분 07.55초, 동경 126도 28분 45.64초 지점)과 신흥동 서단(북위 36도 19분 28.57초, 동경 126도 30분 03.63초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 마. 마량진
항 |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 북위 36도 08분 10초, 동경 126도 30분 09초 지점에서 북위 36도 08분 10초, 동경 126도 30분 50초 지점, 북위 36도 07분 10초, 동경 126도 30분 50초 지점, 북위 36도 07분 10초, 동경 126도 30분 09초 지점 및 북위 36도 07분 44초, 동경 126도 30분 09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 바. 상왕동
도항 | 전북특별
자치도
부안군
위도면
상왕동리 | 상왕동도 북측 오끼바위 북위 35도 39분 55.06초, 동경 126도 06분 43.59초 지점에서 북위 35도 39분 26.68초, 동경 126도 09분 00.95초 지점 및 북위 35도 39분 21.37초, 동경 126도 06분 38.33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 사. 송공항 |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신안군
압해면 | 북위 34도 50분 54.17초, 동경 126도 13분 40.76초 지점에서 북위 34도 50분 54.17초, 동경 126도 13분 25.76초 지점, 북위 34도 51분 01.17초, 동경 126도 12분 54.76초 지점, 북위 34도 50분 |

| | | |
|--------------|-------------------------------------|---|
| | | 21.17초, 동경 126도 12분 54.76초 지점, 북위 34도 50분 21.17초, 동경 126도 14분 52.75초 지점 및 북위 34도 50분 41.17초, 동경 126도 14분 52.75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 아. 홍도항 |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 북위 34도 40분 29.22초, 동경 125도 11분 36.09초 지점과 북위 34도 40분 54.22초, 동경 125도 12분 00.09초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 자. 흑산도
항 |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신안군
흑산면 | 남방파제 기점에서 외영산도 동단, 내영산도 최북단 및 읍동 북동단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 차. 가거항
리항 |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 북위 34도 04분 52.21초, 동경 125도 05분 38.39초 지점과 북위 34도 04분 30.94초, 동경 125도 05분 07.82초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 카. 진도항 |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진도군
임회면 | 북위 34도 22분 42.36초, 동경 126도 07분 32.80초 지점에서 북위 34도 21분 58.36초, 동경 126도 07분 27.80초 지점, 북위 34도 21분 56.36초, 동경 126도 07분 44.80초 지점, 북위 34도 22분 09.86초, 동경 126도 07분 53.80초 지점 및 북위 34도 22분 03.36초, 동경 126도 08분 07.80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 타. 땅끝항 |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해남군
송지면 | 북위 34도 17분 46.10초, 동경 126도 31분 41.02초 지점에서 북위 34도 17분 46.19초, 동경 126도 32분 04.19초 지점 및 북위 34도 18분 07.87초, 동경 126도 32분 04.07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 | | |
|-------------|-----------------------------|---|
| 파. 화홍포
항 |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완도군 | 북위 34도 19분 01.39초, 동경 126도 40분 09.63초 지점에서 북위 34도 18분 44.39초, 동경 126도 39분 38.64초 지점, 북위 34도 18분 00.40초, 동경 126도 40분 13.63초 지점 및 북위 34도 18분 15.40초, 동경 126도 40분 43.63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 하. 강진항 |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강진군
마량면 | 북위 34도 26분 56.34초, 동경 126도 49분 26.08초 지점에서 북위 34도 26분 41.34초, 동경 126도 49분 26.08초 지점, 북위 34도 26분 41.34초, 동경 126도 50분 22.58초 지점 및 북위 34도 26분 57.34초, 동경 126도 50분 22.58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 거. 녹동신
항 |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고흥군
도양읍 |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 동측 돌출부로부터 정동으로 250미터 지점(해상)에서 정북으로 육지와 연결하고, 같은 지점에서 방파제 종점부, 방파제 시점부에서 정동으로 하송도, 상송도 및 상송도에서 진북 10도 방향으로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북측 육지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 너. 거문도
항 |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여수시
삼산면 | 안노루섬 방파제 끝단에서 정서 방향으로 그은 선과 안노루섬 방파제 끝단에서 정북으로 그은 선, 고도 남방파제 끝단에서 정서로 그은 선 안의 해면 |
| 더. 나로도
항 |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고흥군
봉래면 | 애도 최남단에서 북측 파제제(波除堤) 북쪽 끝단, 동측 파제제 시점부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과 애도 최북단과 본도 돌출부를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 러. 진촌항 | 경상남도 | 북위 34도 50분 31초, 동경 128도 13분 12초 지 |

| | | |
|-------------|----------------------------------|--|
| 머. 국도항 | 통영시
사량면 | 점에서 북위 34도 50분 31초, 동경 128도 13분 31초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 | 금평리
경상남도
통영시
육지면
동항리 | 북위 34도 32분 56.45초, 동경 128도 26분 45.59초 지점에서 북위 34도 33분 07.86초, 동경 128도 26분 31.64초 지점, 북위 34도 32분 48.61초, 동경 128도 26분 08.64초 지점 및 북위 34도 32분 38.04초, 동경 128도 26분 21.56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 버. 중화항 |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 북위 34도 47분 33.64초, 동경 128도 22분 53.64초 지점에서 북위 34도 46분 47.54초, 동경 128도 22분 50.13초 지점 및 북위 34도 46분 47.64초, 동경 128도 23분 08.69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 서. 부산남
항 | 부산광역시 | 북위 35도 05분 47.13초, 동경 129도 02분 10.87초 지점에서 진북 164도 방향으로 그은 선(영도대교) 및 북위 35도 04분 34.02초, 동경 129도 01분 29.98초 지점과 북위 35도 04분 50.13초, 동경 129도 02분 23.42초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 어. 구룡포
항 | 경상북도
포항시
구룡포읍 | 사라말과 병포리 북돌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 저. 강구항 |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 강구교 북단의 북위 36도 21분 26.20초, 동경 129도 22분 53.70초 지점과 북위 36도 21분 31.60초, 동경 129도 22분 56.80초 지점을 연결한 선과 북위 36도 21분 50.10초, 동경 129도 23분 38.50초 지점, 북위 36도 21분 50.10초, 동경 129도 23분 47.10초 지점, 북위 36도 20분 38.90초, 동경 129도 23분 46.70초 지점 및 북위 36도 20 |

| | | |
|---------|------------------------|--|
| | | 분 39.00초, 동경 129도 23분 10.70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면 |
| 저. 후포항 |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 동방파제 기점과 북위 36도 40분 10.76초, 동경 129도 27분 25.48초 지점을 연결한 선과 그 점에서 73도로 북서쪽 육지를 향하여 그은 선 안의 해면 |
| 커. 울릉항 | 경상북도
울릉군 | 가두봉 남단에서 살구남 동단을 직선으로 이은 선 안의 해면 |
| 터. 주문진항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 주문진리 동단에서 정남으로 그은 선 안의 해면 |
| 퍼. 추자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 상추자도 대서리 북위 33도 57분 45.53초, 동경 126도 17분 57.76초 지점에서 북위 33도 57분 45.53초, 동경 126도 18분 25.75초 지점, 북위 33도 57분 35.53초, 동경 126도 18분 32.75초 지점 및 북위 33도 57분 29.53초, 동경 126도 18분 06.76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과 하추자도 예초리 북위 33도 57분 21.53초, 동경 126도 19분 57.75초 지점에서 북위 33도 57분 33.53초, 동경 126도 19분 43.75초 지점, 북위 33도 57분 31.53초, 동경 126도 19분 33.75초 지점 및 북위 33도 57분 06.53초, 동경 126도 19분 30.75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 허. 애월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 서방파제 호안 기점부터 북위 33도 27분 50.62초, 동경 126도 19분 21.59초 지점과 북위 33도 28분 7.33초, 동경 126도 19분 21.77초 지점, 북위 33도 28분 13.11초, 동경 126도 19분 36.92초 |

| | | | |
|---------|------------------|---|--|
| | | 지점, 북위 33도 28분 8.01초, 동경 126도 19분 54.07초 지점, 북위 33도 28분 7.71초, 동경 126도 19분 53.94초 지점 및 북위 33도 28분 54.76초, 동경 126도 19분 51.88초 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
| 고. 한림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 수원리 돌각 제1삼각점으로부터 남서로 그은 선과 옹포리 제4삼각점으로부터 북서로 그은 선 안의 해면(한림향교 이내의 해면은 제외한다) | |
| 노. 화순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 용머리 전면(북위 33도 13분 57.82초, 동경 126도 18분 55.77초 지점)에서 북위 33도 13분 43.82초, 동경 126도 18분 55.77초 지점, 북위 33도 13분 41.82초, 동경 126도 19분 34.76초 지점, 북위 33도 13분 51.82초, 동경 126도 20분 07.76초 지점 및 북위 33도 14분 06.82초, 동경 126도 20분 12.76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
| 도. 성산포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 서방파제 기점에서 북위 33도 28분 53.73초, 동경 126도 55분 42.57초 지점, 북위 33도 28분 51.73초, 동경 126도 56분 20.57초 지점 및 동방파제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갑문교 이내의 해면은 제외한다) | |

■ 항만법 시행령 [별표 2]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의 구분(제3조제2항 관련)

| 구분 | 항만명 |
|---------------------|--|
| 1. 국가관리무역항
(14개) | 경인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장항항, 군산항, 목포항,
여수항, 광양항, 마산항, 부산항, 울산항, 포항항, 동해·묵호항 |
| 2. 지방관리무역항
(17개) | 서울항, 태안항, 보령항, 완도항, 하동항, 삼천포항, 통영항, 장
승포항, 옥포항, 고현항, 진해항, 호산항, 삼척항, 옥계항, 속초
항, 제주항, 서귀포항 |

■ 항만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7. 4.>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의 구분(제3조제3항 관련)

| 구분 | 항만명 |
|---------------------|---|
| 1. 국가관리연안항
(12개) | 용기포항, 연평도항, 격렬비열도항, 상왕등도항, 흑산도항, 가거항리항, 거문도항, 국도항, 후포항, 울릉항, 추자항, 화순항 |
| 2. 지방관리연안항
(19개) | 대천항, 마량진항, 송공항, 홍도항, 진도항, 땅끝항, 화홍포항, 강진항, 녹동신항, 나로도항, 진촌항, 중화항, 부산남항, 구룡포항, 강구항, 주문진항, 애월항, 한림항, 성산포항 |

■ 항만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2. 7. 4.>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는 토지의 범위(제24조제1항제1호 관련)

1. 부두별 국가 또는 시·도 귀속 토지

| 일반 부두 | | 컨테이너 부두 | |
|-----------------------|-----------------------|----------------|----------------|
| 소형 부두(적재 톤 수 2만톤급 미만) | 대형 부두(적재 톤 수 2만톤급 이상) | 피더 부두 | 그 밖의 컨테이너 부두 |
| 안벽(岸壁)부터 200미터 | 안벽부터 200~300미터 | 안벽부터 300~500미터 | 안벽부터 500~800미터 |

2.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을 위해 조성한 토지 중 공공시설용지

비고

1. 위 표에서 안벽은 그 안벽의 수역(水域) 측 끝단을 기준으로 한다.
2. 위 표에서 "피더 부두"(Feeder Harbor)란 피더 선박(항만 간에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중소형 컨테이너 선박)이 사용하는 부두를 말한다.
3. 위 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인 경우에도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전용 목적으로 조성한 토지는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는 토지의 범위에 서 제외한다.
4. 위 표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의 크기, 부두의 용도, 화물의 종류, 입지 여건 및 부두에 설치되는 하역장비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기업 전용 목적의 토지
 - 다. 그 밖의 컨테이너 부두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장래의 물동량 및 하역능력 등을 고려하여 컨테이너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항만시설용지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항만법 시행령 [별표 5]

시설장비(제38조 관련)

1. 갑문본체: 상·하부 대차를 포함한다.
2. 갑문구동장치: 동력전달장치를 포함한다.
3. 충수(充水: 물 보충)설비: 충수문과 충수용 펌프설비를 말한다.
4. 취수·배수설비: 취수·배수문과 구동장치를 말한다.
5. 컨테이너 크레인(Container Crane): 부두(안벽시설)에 설치되어 선박의 컨테이너를 부두의 육상 운송장비에 실어주거나 야드(선박에서 컨테이너가 내려져 잠시 보관되는 곳)로부터 운송되어 온 컨테이너를 선박에 실어주는 컨테이너 전용 크레인을 말하며, 타이어식 또는 레일식을 포함한다.
6. 트랜스퍼 크레인(Transfer Crane): 야드에 설치되어 컨테이너를 들어올리고 내려서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야드 트랙터, 화물차 등에 싣거나 내려주는 크레인을 말한다.
7.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안벽이나 야드에 적치된 컨테이너를 다른 장비의 도움 없이 야드 또는 안벽으로 직접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를 말한다.
8. 야드 트랙터(Yard Tractor): 안벽과 야드 사이에서 야드 새시를 견인하여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장비를 말하며, 무인 트랜스포터(Automatic Guided Vehicle, Transporter: 수백 톤의 화물을 운반하는 무인 특수 장비)를 포함한다.
9. 리치 스택커(Reach Stacker): 주로 야드에서 컨테이너를 운반·적재·반출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로서 신축형 붐을 이용하여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10. 야드 새시(Yard Chassis): 안벽과 야드 사이에서 야드 트랙터와 조합되어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장비를 말한다.
11. ship 로더(Ship Loader): 육상이나 야드에 준비된 철광석, 석탄, 곡물 등 화물을 배에 싣는 장비를 말한다.
12. ship 언로더(Ship Unloader): 배에 실린 철광석, 석탄, 곡물 등 화물을 육상이나 야드로 하역할 때 사용하는 장비를 말한다.
13. 스택커 리클레이머(Stacker Reclaimer): 배에서 이송된 철광석, 석탄, 곡물 등 화물을 야드에 적치하거나 야드에 적치된 화물을 다시 외부로 반출할 때 사용하는 장비로서 스택커와 리클레이머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14. 벨트 컨베이어(Belt Conveyor): 벨트에 석탄, 곡물 등 벌크화물을 올려 운송하는 장비로서 항만시설과 결합되어 있으며, 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15. 다목적 크레인(Multipurpose Crane): 레벨러핑 크레인(Level Luffing Crane: 화

물을 일정한 높이에서 수평으로 옮기는 크레인) 및 브리지타입 크레인(Bridge Type Crane: 화물을 들어올리거나 내리는 다리 모양 크레인)을 말한다.

16. 모빌 하버 크레인(Mobile Harbor Crane): 주로 잡화의 하역 선적에 사용되는 장비로서 레일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17. 로딩 암>Loading Arm): 유류, 가스의 하역·선적에 사용하는 장비를 말한다.

18. 탑승교(Passenger Boarding Bridge)

19. 그 밖의 시설장비: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시설장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장비로서 항만에서의 하역작업을 위해 시설장비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신고한 시설장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장비를 말한다.

■ 항만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0. 12. 29.>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등(제41조제1항 관련)

1. 정기안전점검

- 가. 항만시설(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항만시설이 아닌 시설이 구조 및 형태의 변경으로 항만시설이 된 경우에는 구조 및 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하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1년 이내
- 나. 가목에 따른 최초 정기안전점검일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다만, 태풍 또는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의 항만시설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시기는 관리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긴급안전점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청이 항만시설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가. 자연재해로 항만시설의 기능과 성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 나. 항만시설의 붕괴, 침하,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항만시설에 대해 긴급안전점검의 실시를 요청한 경우

3. 정밀안전점검

- 가. 정기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항만시설의 기능 유지 및 안전상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어 항만시설에 대한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관리청이 판단하는 경우 또는 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기본시설 중 항로, 정박지, 소형선 정박지, 선회장 등 수역시설과 관련하여 수중(水中)의 침몰품 또는 장애물 등으로 인해 선박의 안전항행과 정박(碇泊)에 지장이 있다고 관리청이 판단하는 경우

- 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다음의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

- 1) 방파제, 파제제, 안벽(널말둑 또는 강관파일 등을 사용한 특수구조 형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돌핀(널말둑 또는 강관파일 등을 사용한 특수구조 형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소형선 부두(널말둑 또는 강관파일 등을 사용한 특수구조 형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및 그 밖의 계류시설 중 여객 이용시설

- 가) 최초 정밀안전점검: 해당 항만시설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6년 이내

- 나) 정기 정밀안전점검: 최초 정밀안전점검일부터 6년마다 1회 이상

- 2) 방사제, 방조제, 도류제, 호안, 도로, 교량, 철도, 궤도, 운하, 안벽(널말둑 또

는 강관파일 등을 사용한 특수구조 형식인 것은 제외한다), 소형선 부두(널팔
뚝 또는 강관파일 등을 사용한 특수구조 형식인 것은 제외한다), 잔교, 부잔
교, 선착장

가) 최초 정밀안전점검: 해당 항만시설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0년
이내

나) 정기 정밀안전점검: 최초 정밀안전점검일부터 10년마다 1회 이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의 증축, 개축 및 리모델링
등을 위해 공사가 진행 중인 항만시설, 철거 예정인 항만시설, 그 밖에 사용하지
않는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항만시설의 소유자가 관리청과 협의하여 정기안
전점검·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항만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2. 7.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3조제1항제1호 | 200 | | |
| 나.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경우 | 법 제113조제2항 | 20 | 50 | 100 |
| 다.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3조제1항제2호 | 200 | | |
| 라.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자체점검 결과 정비·보수가 필요한 | 법 제113조제1항제3호 | 200 | | |

| | | | | |
|---|----------------|-----|----|-----|
| 시설장비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 | | |
| 마.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관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3조제1항제4호 | 100 | | |
| 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13조제1항제5호 | 200 | | |
| 사. 법 제34조제2항의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법 제113조제1항제6호 | 200 | | |
| 아.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검사대행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 법 제113조제1항제7호 | 200 | | |
| 자.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3조제1항제8호 | 200 | | |
| 차.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 | 법 제113조제1항제9호 | 50 | 70 | 100 |
| 카.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3조제1항제10호 | 200 | | |
| 타. 법 제73조제3항, 제74조제5항 또는 제75조제2항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3조제1항제11호 | 50 | | |
| 파. 법 제85조제1항 또는 제2항(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법 제6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관리기관의 자료제출 요청 및 출입검사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정당한 | 법 제113조제1항제12호 | 50 | 70 | 100 |

| | | | | |
|---|----------------|-----|-----|-----|
| 사유 없이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
제출한 경우 | | | | |
| 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7조제
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
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를 포함한다), 시·도지사, 비관
리청 또는 사업시행자의 행위
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 법 제113조제1항제13호 | 50 | 70 | 100 |
| 거. 법 제8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에 출
입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출
입한 경우 | 법 제113조제1항제14호 | 50 | 70 | 100 |
| 너. 법 제87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
여 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
거나 방해한 경우 | 법 제113조제1항제15호 | 100 | 150 | 200 |
| 더. 법 제10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
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
로 한 경우 또는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한 경우 | 법 제113조제1항제16호 | 50 | 70 | 100 |



항만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13.] [해양수산부령 제807호, 2026. 7. 13.,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 - 항만시설의 사용) 051 - 773 - 5775, 5781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 운영) 051 - 773 - 5755, 5757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 항만제도 일반) 051 - 773 - 5920, 5921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051 - 773 - 596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만지원시설) 「항만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다목8)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7. 4., 2025. 4. 1.>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업무용 시설
2. 항만 관련 회의 및 장비 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운송사업자의 업무용 시설 및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시설
4. 항만에서 일하는 사람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체육시설
5. 항만에 입항·출항하는 선박의 수리를 위한 수리조선(修理造船) 시설 및 장비
6. 항만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준설토(浚渫土)의 투기(投棄)를 위한 시설
7. 항만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한 해양관측시설
8. 선박 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9. 「해양환경관리법」 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10.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
11.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버티포트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한 때
 2.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한 때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5년 단위의 항만개발 및 투자계획
 2. 항만별 항만개발의 내용, 규모 및 필요한 자금 등 세부내용
 3. 그 밖에 항만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항만기본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제5조(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의 허가) ①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란 다음 각 호의 도서(圖書)를 말한다.

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2. 사용 또는 점용 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求積圖)
3.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4. 평면도, 정면도 및 측면도(건축 또는 기계 설비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영 제13조제2항제6호에서 “투자비 보전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공고한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투자비 보전계획서
2.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고 시에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

④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시행·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시설 유지·보수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면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해당하는 도면만 첨부할 수 있다.

1. 평면도
2.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정면도 및 측면도(건축 또는 기계 설비인 경우만 해당한다)

⑤ 법 제9조제3항제3호에서 “재원조달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항만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재원조달능력의 적정성: 신용도 및 자금조달계획을 통해 판단
2. 사업계획의 적정성: 건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통해 판단
3. 참여자의 적정성: 실수요자 참여 여부 및 항만 운영·사용 실적을 통해 판단
4. 총사업비의 적정성: 산출근거 및 총사업비 집행계획을 통해 판단

제6조(공고 대상 항만개발사업 등) ① 관리청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영 제16조에 해당하는 항만개발사업을 매년 1월 말까지 공고해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의 안전 확보 및 급격한 경제상황 변동 등으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항만개발사업은 그 시기와 관계 없이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8.>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 중 관할 항만개발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2.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3.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4.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사 기준
5. 허가시기
6. 허가신청 요령
7. 그 밖에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9조제8항에서 “항만개발사업계획, 자원조달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제5조제5항 각 호의 기준
2. 투자비 보전계획의 적정성

④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공고 대상 항만개발사업의 시행·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항만개발사업심사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심사위원회는 항만개발사업의 시행·변경 허가의 신청이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며, 항만개발사업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항만개발사업의 고시)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말한다)
2. 항만명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제8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및 신고)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 중 변경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평면도(변경 전·후의 것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변경된 항만개발사업실시시설계도서상의 총사업비 명세 및 예정공정표

③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9조(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연장) ① 법 제11조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0. 12. 28., 2023. 6. 19.>

1.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항만개발사업 여건의 변화 등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의 책임이 없는 사유
 2.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항만개발사업의 착수시기 또는 준공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② 제1항제2호의 사유로 항만개발사업의 착수시기 또는 준공기한을 연기하는 경우로서 비관리청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연기할 수 없다. <개정 2023. 6. 19.>

제10조(항만개발사업의 준공보고서 등) ① 비관리청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항만개발사업 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8.>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준공 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4.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의 대비표
 5. 총사업비 명세서(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는 시설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6. 하자보수 보증보험증권(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는 시설에 관한 부분만 해당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및 제72조를 준용한다)
-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11조(준공 전 사용의 신고) ① 비관리청은 법 제12조제5항 단서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 ② 비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항만시설의 공정 현황
 2.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항만시설의 도면 및 사진

제12조(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한 후 신청자 중에서 추천하여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2. 7. 4.>

1. 평가대상 토지의 위치 및 면적
2. 토지 조성공사의 준공 또는 준공예정 연월일
3.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 일시 및 장소
4. 지정하려는 감정평가법인등의 수
5.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신청서 제출기한 및 제출기관
6. 감정평가법인등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사업자등록증 및 감정평가사 등록증 사본 또는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서의 사본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을 위해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했을 때에는 그 공고 사항을 지체 없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 결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감정평가법인등이 둘 이하인 경우에는 5일 이상 재공고하되,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감정평가법인등이 둘 이하인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하여 직권으로 감정평가법인등을 지정한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지정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비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

제13조(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지 않는 전용 항만시설) ① 영 제24조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비관리청이 화주(貨主)인 화물의 취급과 관련하여 설치하는 시설
2. 비관리청이 특정 화주의 화물을 취급하기 위해 설치하는 액체화물저장시설

② 영 제24조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7. 4.>

1. 비관리청의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제1항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화주인 화물의 취급과 관련하여 설치하는 화물의 유통시설·판매시설
2. 비관리청의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특정 화주의 화물을 취급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일로, 저유시설(貯油施設), 가스저장시설 및 액체화물저장시설

[제목개정 2020. 12. 28.]

제14조(사업기간 연장의 귀책사유) 영 제25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비관리청의 귀책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비관리청이 고의로 개발사업을 지연시킨 경우
2. 비관리청의 과실로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준공확인을 받지 못해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
3.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부족으로 항만개발사업이 지연된 경우

제15조(총사업비 산정 시 제외되는 비용)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수역시설의 준설에 드는 비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수역시설의 준설 및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
2.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시설의 접안수역 준설 및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

제16조(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7. 4.>

1. 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2. 축척 1천200분의 1의 사용위치 실측도

[제목개정 2022. 7. 4.]

제17조(토지의 매도청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도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토지매도청구서에 매도청구한 토지의 예상 매각가격 산출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8조(전용 목적의 토지·항만시설의 임대허가) 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항만시설의 임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임대허가 신청서에 임대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7. 4., 2023. 6. 19.>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비관리청의 토지·항만시설에 대한 임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그 임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허가를 받은 토지·항만시설에 대한 재임대는 허가할 수 없다. <개정 2022. 7. 4., 2023. 6. 19.>

1. 전용 목적의 토지·항만시설의 전부에 대한 임대가 아닐 것
2. 토지·항만시설의 임대가 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용도 및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허가의 목적에 변경을 초래하지 않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토지·항만시설의 임대차 항만에서 일하는 사람 및 항만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한 경우
- 나. 비관리청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 다. 액체화물을 하역하거나 이송하기 위한 시설(계류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토지 및 항만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료 징수 기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料率)에 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23. 6. 19.>

④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토지 및 항만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료 징수 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계약으로 정한다.<신설 2023. 6. 19.>

제19조(비귀속 토지·항만시설의 양수신고) 비관리청이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토지 및 항만시설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양수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양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양수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의 명칭
2. 양수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의 위치
3. 양수 사유 및 취득일
4. 양수가액
5. 양도자 정보(성명, 주소 및 업종 등)
6. 양수자 정보(성명, 주소 및 업종 등)
7. 그 밖에 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20조(항만운영세칙)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영세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시설의 명칭 및 위치
2. 항만운영계획도(항만구역의 경계, 항로, 정박지, 계류시설 및 구역별 명칭 등을 포함한다)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신고 방법 및 절차 등
4. 항만시설 사용자의 준수사항
5.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항만대장)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항만대장(이하 “항만대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② 항만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도면(항만의 지형 및 방위와 수심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평면도를 말한다)을 첨부해야 한다.

1. 항만구역
2. 행정구역의 명칭과 경계선

3. 철도 및 도로의 표시
4. 항만시설의 종류 및 위치
5. 항로 및 정박지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항만구역의 변동이나 항만시설의 신설·멸실 등의 사유로 항만대장 및 그 첨부서류의 내용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정정해야 한다.

제22조(항만관리법인의 지정신청)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만관리법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23조(출입통제구역의 지정)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장소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그 지정일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표지판으로 제작하여 출입통제구역 입구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고, 관보 또는 공보,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1. 출입통제구역의 지정 사유
2. 출입통제구역의 위치 및 위치도
3. 출입통제 기간
4. 위반시 벌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출입통제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신기술 지원절차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은 「해양수산물과학기술 육성법」, 「건설기술 진흥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률에 따라 인증이나 지정 등을 받고, 그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 신공법 및 특허 등을 말한다.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에의 적용을 장려할 신기술과 시험시공 지원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운영,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및 시험시공 지원 대상 기술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25조(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안전법」의 적용특례)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작업선(이하 “항만건설작업선”이라 한다)에 대해 「선박안전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항만건설장비에 관한 검사사항을 포함하여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1) 또는 같은 호 나목1)에 따른 항만건설작업선에 해당하게 되어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이 된 선박에 대한 최초 정기검사는 법 제

39조제1항에 따라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된 후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제3항에 따라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선박의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말한다)에 실시한다.

③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준설선(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에 따른 준설선을 말하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준설선은 제외한다)이 그 검사의 유효기간 중에 항만건설작업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선박안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 및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해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발급된 건설기계검사증은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로 본다.

⑤ 대통령령 제29139호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발급된 건설기계검사증의 유효기간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⑥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항만건설작업선 중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선박은 같은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날은 제외한다)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前後) 3개월 이내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해 「선박안전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검사의 절차,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26조(신고 대상 항만시설) ①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창고 및 야적장
 2. 항만시설용 부지
 3. 여객이용시설
 4. 항만 관련 업무용시설
 5. 그 밖에 사용 사실의 신고가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만시설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사용료 대납업무 경비)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자의 사용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납부한 자에게 지급하는 대납업무 경비는 사용료 납입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납업무 경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월 단위의 대납업무 경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대납한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8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변경신청)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제29조(준공확인 신청 등) ① 영 제59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제30조(준공 전 사용의 신고) 영 제60조에 따른 준공 전 사용신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제31조(토지의 매도청구)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도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토지매도청구서에 매도청구한 토지의 예상 매각가격 산출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2조(관리기관 지정 신청) 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은 별지 제19호서식으로 신청한다.

제33조(입주계약 등의 신청) 법 제71조제1항 및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입주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해당 사업에 관한 인가·허가·면허·등록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5. 관련 법령에 따른 입주자격의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제34조(시정기간) 법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제35조(토지 등의 처분 신청) ① 법 제7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이하 이 조에서 “입주계약해지자”라 한다)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 안의 토지나 공장·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양도계획서에 양도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입주계약해지자가 영 제73조제2항의 기간 내에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처분신청서에 처분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분 신청을 받은 관리기관 담당자는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제36조(잔무 처리) 법 제7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잔무 처리”란 입주계약의 해지 당시 체결되어 있는 수출 또는 수입 계약의 이행과 물품의 재고 조사 및 처분을 말한다.

제37조(공동시설) 법 제77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도로, 가로등, 울타리, 체육시설 및 운동장을 말한다.

제38조(우선지원 대상 기반시설) 영 제78조제2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유수지(遊水池) 시설 및 광장을 말한다.

제39조(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83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0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법 제87조제2항 본문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 변경·제거의 통지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

③ 법 제87조제5항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증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제41조(재결신청서) 영 제87조제2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제42조(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 영 제89조제3항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제43조(권리·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 ① 법 제10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권리·의무의 이전 인가는 해당 항만개발사업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공정이 전체 공정의 100분의 20 이상 진행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권리·의무의 이전을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전체 공정의 100분의 20 미만 이 진행된 경우에도 권리·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이전으로 영 제45조제1항제7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자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미리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협의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권리·의무 이전 인가 신청서에 해당 권리·의무와 관련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4조(수수료)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105조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5천원(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4천원)으로 하되,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해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전용 목적의 토지·항만시설의 임대허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 7. 13.]

부칙 <제420호, 2020. 7.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시행·변경 허가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항만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시행·변경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항만건설작업선의 항만건설장비 검사사항에 관한 적용례) 해양수산부령 제299호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8년 9월 5일 전에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고 이 규칙 시행 이후에 다음 정기검사의 시기가 도래하는 항만건설작업선의 항만건설장비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부터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항만건설작업선의 중간검사 시기의 기산일에 관한 특례) 해양수산부령 제239호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7년 6월 27일 전에 「선박안전법」 제8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은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해 2017년 6월 27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중간검사의 경우에는 제25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6월 27일 이후 정기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25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간검사 시기를 기산한다.

제6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법 시행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물양장”을 “소형선 부두”로 한다.

②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항 단서 중 “「항만법」 제2조제15호”를 “「항만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③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9호의2 중 “「항만법 시행령」 제25조의3”을 “「항만법 시행령」 제42조”로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항만법」 제29조의3제1항”을 “「항만법」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④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항만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을 “「항만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물양장(物揚場)”을 “소형선 부두”로 한다.

⑥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항만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를 “「항만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⑦ 항만시설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항만법 제26조”를 “「항만법」 제36조”로, “항만법시행령 제20조”를 “「항만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호안등”을 “호안(해안보호독을 말한다) 등”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물양장”을 “소형선 부두”로, “돌핀”을 “돌핀(계선말뚝을 말한다)”으로, “램프등”을 “램프(경사식 진출입로를 말한다) 등”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물양장”을 “소형선 부두”로 한다.

⑧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항만법」 제24조부터 제28조”를 “「항만법」 제31조부터 제35조”로, “「항만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를 “「항만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4조제1항”을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책임감리”를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1항”을 “법 제3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5조제2항”을 “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26조제1항제3호”를 “법 제33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6조제1항”을 “법 제3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부분 단서 중 “법 제28조제1항”을 “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 중 “법 제26조제2항”을 “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26조제2항”을 “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26조제3항”을 “법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제1항”을 “법 제3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7조제1항제1호”를 “법 제34조제1항제1호”로, “법 제26조제1항제3호”를 “법 제33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7조제1항제2호”를 “법 제34조제1항제2호”로, “법 제26조제1항제3호”를 “법 제33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24조제1항제1호”를 “영 제39조제1항제1호”로, “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법 제33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영 제24조제1항제3호”를 “영 제39조제1항제3호”로, “법 제26조제1항제3호”를 “법 제33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24조제2항”을 “영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제2항”을 각각 “법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8조제2항”을 각각 “법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항만법」 제24조”를 “「항만법」 제31조”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항만법」 제24조”를 “「항만법」 제31조”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항만법」 제26조제1항”을 “「항만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항만법」 제26조”를 “「항만법」 제33조”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항만법」 제26조”를 “「항만법」 제33조”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항만법」 제28조제2항”을 “「항만법」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항만법」 제28조”를 “「항만법」 제35조”로 한다.

⑨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2호 중 “항만공사”를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항만법」 제30조제1항 본문”을 “「항만법」 제41조제1항제1호”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3호 중 “「항만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을 “「항만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으로 한다.

⑩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2 라목4) 및 5) 중 “항만공사”를 각각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⑪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항만공사”를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⑫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제4호 중 “「항만법」 제89조”를 “「항만법」 제26조”로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4호 중 “「항만법」 제89조”를 “「항만법」 제26조”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만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

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52호,2020. 12. 28.>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6호,2021. 6. 3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6호,2022. 2. 24.>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4호,2022. 7.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용 목적의 항만시설의 임대허가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제3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임대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05호,2023. 6. 19.>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7호,2025. 4.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7호,2026. 7. 13.>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항만법 시행규칙 [별표 1]

항만건설작업선의 항만건설장비에 관한 검사사항(제25조제1항 관련)

1. 「선박안전법」 제7조에 따른 건조검사 및 별도건조검사의 경우의 검사사항
 - 가. 항만건설장비의 설계, 구조 부분 및 각 기능 장치의 적합성에 대한 검사
 - 나. 항만건설장비의 호이스트(hoist: 비교적 소형인 화물을 들어 옮기는 장치) 및 감속기 등 주요 구조 부분에 사용되는 재료의 적합성에 대한 검사
 - 다. 항만건설장비의 조립상태, 성능 및 안전장치의 적합성에 대한 검사
2. 「선박안전법」 제8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경우의 검사사항
 - 가. 항만건설장비의 정격부하를 기본으로 하는 부하시험 검사
 - 나. 항만건설장비의 주요 구조에 대한 비파괴시험 검사
 - 다. 항만건설장비의 구조, 성능 및 안전장치에 대한 안전성 확인 및 검사
3. 「선박안전법」 제9조에 따른 중간검사의 경우의 검사사항: 제2호다목의 검사사항에 대한 검사
4. 「선박안전법」 제10조에 따른 임시검사의 경우의 검사사항: 제1호 각 목의 검사사항에 대한 검사(항만건설장비 중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행정처분 기준(제3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행정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중지 또는 항만시설사용중지 처분을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인명 또는 재산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1)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허가
2)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체차 | 법 제83조 제1항제1호 | 허가·지정 또는 승인 취소 | - | - |
| 법체차 시설의 사용허가 | | | | |

| | | | | |
|--|---------------|----|---------------------|---------------------|
| 4)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5)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6)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 | | | | |
| 나.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허가내용을 위반한 경우 | 법 제83조 제1항제2호 | 경고 | 공사중지
3개월 | 허가취소 |
| 다. 법 제10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변경 신고 및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 신고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 법 제83조 제1항제3호 | 경고 | 공사중지
3개월 | 공사중지
6개월 |
| 라.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항만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 제1항제4호 | 경고 | 허가취소 | |
| 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면제받은 경우 | 법 제83조 제1항제5호 | 경고 | 항만시설
사용중지
3개월 | 항만시설
사용중지
6개월 |
| 바.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 법 제83조 제1항제6호 | 경고 | 항만시설
사용중지
3개월 | 허가취소 |
| 사.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를 납부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내에 내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 제1항제7호 | 경고 | 항만시설
사용중지
3개월 | 허가취소 |
| 아. 사업시행자가 법 제5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원형지를 공급한 경우 | 법 제83조 제1항제8호 | 경고 | | |

■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7. 4.>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아도 됩니다.

(앞쪽)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0일 |
| 신청인 |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 주소(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 |
| 신청사항 | 항만명 | | |
| | 사업 종류 | | |
| | 사업 목적 | | |
| | 사업 장소 | | |
| | 사업 규모 | | |
| | 시설이용계획 | | |
| | 사업 기간 | ~ (일간) | |
| | 사업 방법 | | |
| | 변경 사유
(변경허가 신청
시에만 작성) | | |
| | 그 밖의 사항 | | |

「항만법」 제9조제2항·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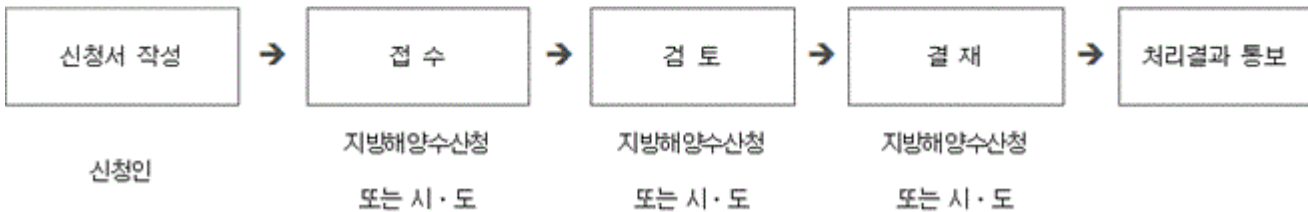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위쪽)

| | | |
|------|---|--|
| 첨부서류 | 1.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업계획 및 다음 각 목의 설계도서
가.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나. 사용 또는 점용 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求積圖)
다.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평면도, 정면도 및 측면도(건축 또는 기계 설비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및 그 산출명세
3. 항만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조달계획(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도 첨부해야 합니다)
4.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나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또는 지적평면도와 인접지를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5. 영 제 14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법 제9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또는 토지 형태의 항만시설을 조성하는 항만개발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투자비 보전계획서(「항만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공고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7.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항만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고 시에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항만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공고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5,000원
·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4,000원 |
|------|---|--|

처 리 절 차



■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항만시설 유지·보수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아도 됩니다.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4일 |
| 신청인 |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 주소(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 |
| 신청사항 | 항만명 | | |
| | 사업 종류 | | |
| | 사업 목적 | | |
| | 유지·보수 구간 | | |
| | 사업 규모 | | |
| | 사업 기간 | ~ (일간) | |
| 유지·보수에 필요한 항만시설의 사용 계획 등 그 밖의 사항 | | | |

「항만법」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시설 유지·보수 항만개발사업 시행 또는 변경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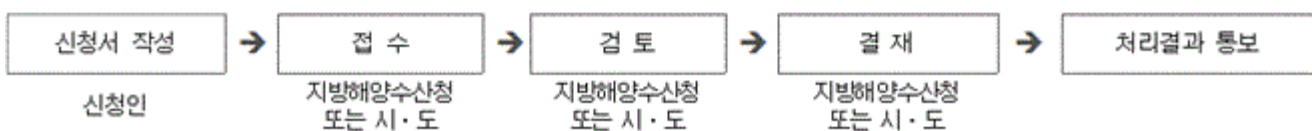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평면도
2.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정면도 및 측면도(건축 또는 기계 설비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5,000원
·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우: 4,000원 |
|------|---|---|

처 리 절 차

■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20일 |
|------|------|----------|

| | | |
|-----|---------------------------------------|--------------|
| 신청인 |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

| | | | | | | | |
|--------------------|---------|---------|--|--|--|--|--|
| 항만개발
사업실시
계획 | 항만명 | | | | | | |
| | 사업 종류 | | | | | | |
| | 사업 명칭 | | | | | | |
| | 사업 장소 | | | | | | |
| | 사업 목적 | | | | | | |
| | 사업 규모 | 시설 | | | | | |
| | | 규모 | | | | | |
| | 시설 이용계획 | | | | | | |
| | 사업 기간 | ~ (일간) | | | | | |
| | 사업 방법 | | | | | | |
| | 그 밖의 사항 | | | | | | |

| | | | | | |
|------------|-------|--------------------|--|--|--|
| 항만시설
사용 | 사용 시설 | 명칭 | | | |
| | | 수량 | | | |
| | | 위치 | | | |
| | 사용 목적 | | | | |
| | 사용 기간 | ~ (일간) | | | |

「항만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귀하

| | |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음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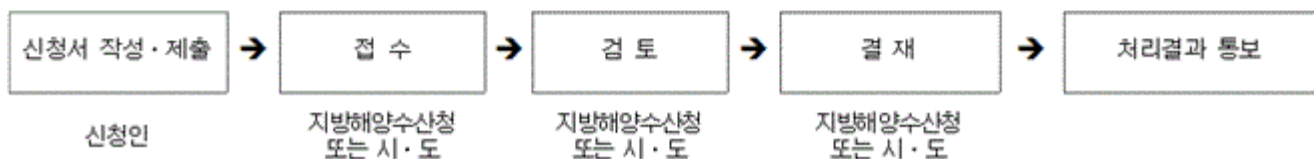
〈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

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평면도
2. 항만개발사업실시설계도서
3.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합니다)
4.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 및 이에 따른 조치 계획(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 및 이행 계획서(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6.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사업으로 한정합니다)
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협의 결과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 결과(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표조사 대상사업으로 한정합니다)
8.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법 제45조에 따라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토지로 한정합니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항만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에 대한 법 제16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계획서를 포함합니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 외에 항만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변경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절차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10일 |
|------|------|----------|

| | | |
|-----|---------------------------|--------------|
| 신고인 |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 | | | |
|--------------------|---------|---------|--|--|--|--|--|
| 항만개발
사업실시
계획 | 항만명 | | | | | | |
| | 사업 종류 | | | | | | |
| | 사업 명칭 | | | | | | |
| | 사업 장소 | | | | | | |
| | 사업 목적 | | | | | | |
| | 사업 규모 | 시설 | | | | | |
| | | 규모 | | | | | |
| | 시설이용계획 | | | | | | |
| | 사업 기간 | ~ (일간) | | | | | |
| | 사업 방법 | | | | | | |
| | 그 밖의 사항 | | | | | | |

| | | | | | | | |
|------------|----------------------------|---------------------------|--|----|--|--|--|
| 변경되는
내용 |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또는 주소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 | | | |
| | | 주소(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 | |
| | 총사업비 | 당초 | | 변경 | | | |
| | 사업 면적 | 당초 | | 변경 | | | |
| | 위치 및 구조 | 당초 | | 변경 | | | |
| | 사업 기간 | 당초 | | 변경 | | | |
| | 기타 | | | | | | |

「항만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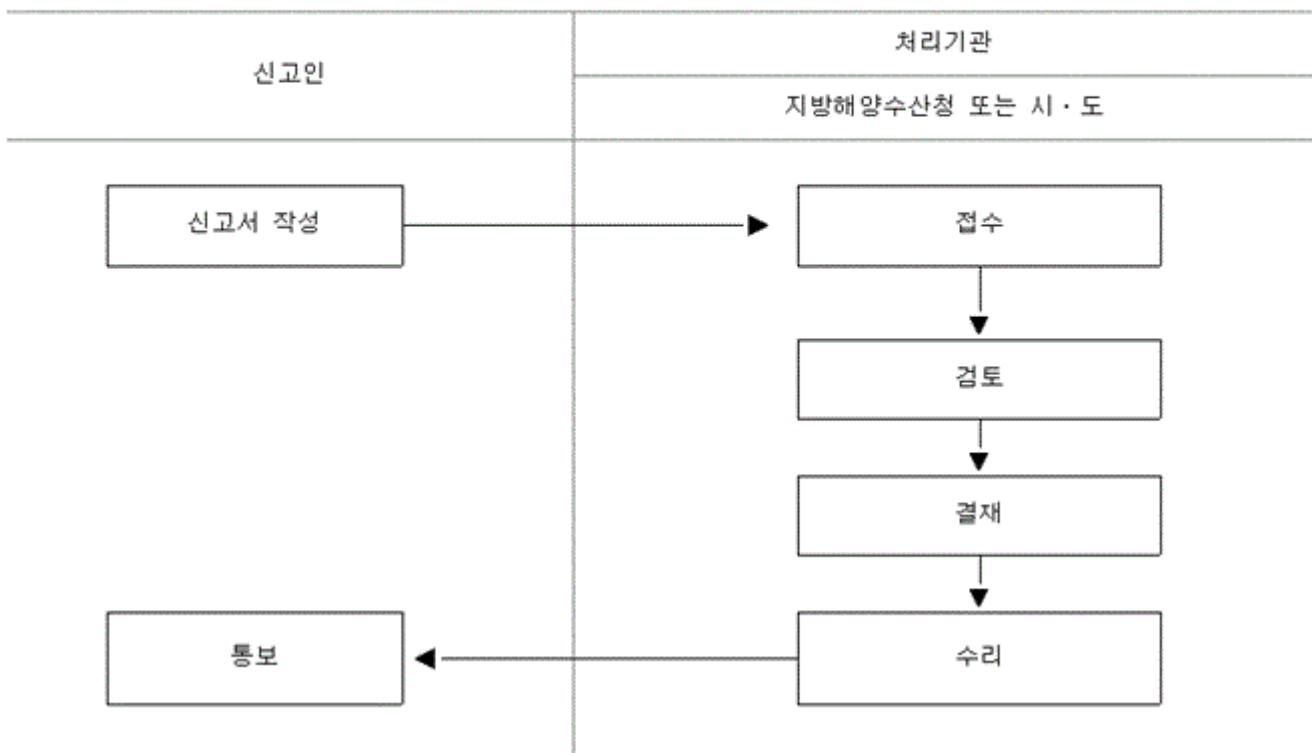
귀하

| | | |
|---|--|---------------|
| 첨부서류
(변경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만
첨부합니다) | 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평면도(변경 전·후의 것을 말함
니다) | 수수료

없음 |
| |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변경된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도서상의 총사업비 명세 및 예정공정표 | |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0일 |
|------|------|------|-----|

| | | |
|-----|---------------------------|--------------|
| 신고인 |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 | | | |
|--------------------|---------|---------|--|--|--|--|--|
| 항만개발
사업실시
계획 | 항만명 | | | | | | |
| | 사업 종류 | | | | | | |
| | 사업 명칭 | | | | | | |
| | 사업 장소 | | | | | | |
| | 사업 목적 | | | | | | |
| | 사업 규모 | 시설 | | | | | |
| | | 규모 | | | | | |
| | 시설이용계획 | | | | | | |
| | 사업 기간 | ~ (일간) | | | | | |
| | 사업 방법 | | | | | | |
| | 그 밖의 사항 | | | | | | |

| | | | | | |
|------------|-------|----|---|-----|--|
| 항만시설
사용 | 사용 시설 | 명칭 | | | |
| | | 수량 | | | |
| | | 위치 | | | |
| | 사용 목적 | | | | |
| | 사용 기간 | ~ | (| 일간) | |

「항만법」 제1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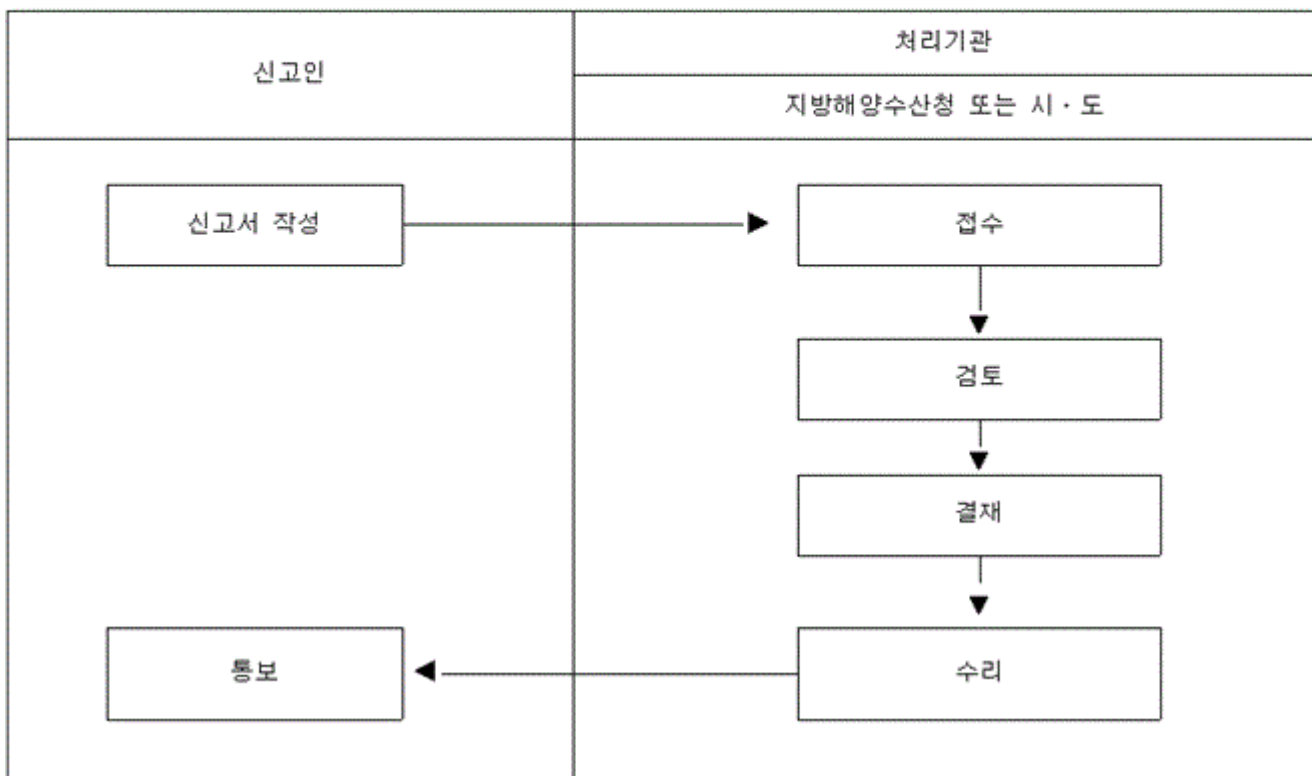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평면도
2. 항만개발사업실시설계도서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 7. 4.>

항만개발사업 준공보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보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20일 |
|------|------|----------|

| | | |
|-----|---------------------------|--------------|
| 보고인 |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
| 사업
개요 | 항만명 | |
| | 사업 종류 | |
| | 사업 장소 | |
| | 사업 규모 | |
| | 사업 목적 | |
| | 총사업비 | |
| | 사업 기간 | 착공 (일간)
준공 |
| | 귀속시설명세 | |
| | 그 밖의 사항 | |

「항만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준공확인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준공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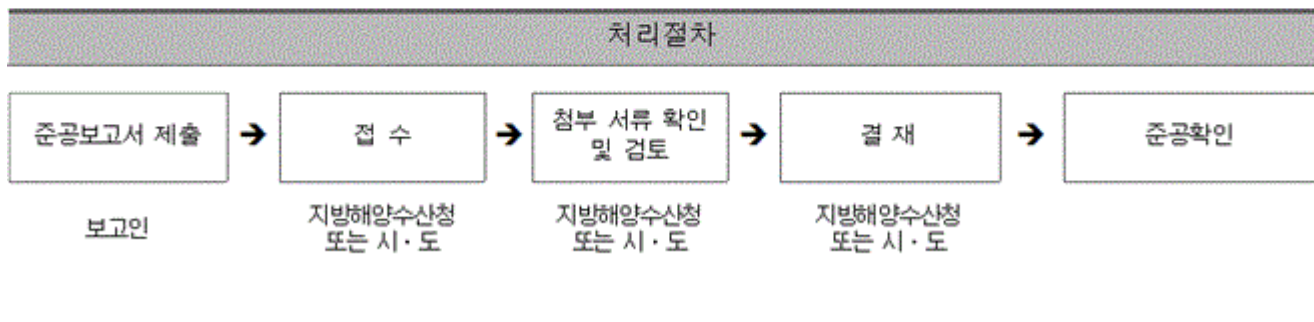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시장·군수·구청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 국국토정보공사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준공 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4.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의 대비표
5. 총사업비 명세서(「항만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는 시설에 관한 부분만 해당합니다)
6. 하자보수 보증보험증권 | 수수료
없음 |
|------|--|-----------|

210mm × 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 호

준공확인증명서

시행자 성명:

주소:

귀하가 시행한 항만개발사업에 대하여 「항만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확인하고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1. 항만명(위치):
2.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3. 항만개발사업 장소:
4. 항만개발사업 기간(준공 연월일):
5. 준공시설(귀속 여부):

년 월 일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

시 · 도 지 사

작 인

준공 전 사용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
| 신고인 |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 주소(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 |
| 신고내용 | 사업의 명칭 | | |
| |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신고)일 | | |
| | 위치 | | |
| | 준공예정일 | | |
| | 사용시설 내용 | | |
| | 사용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 | |
| 사용 목적 | | | |

「항만법」 제12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 전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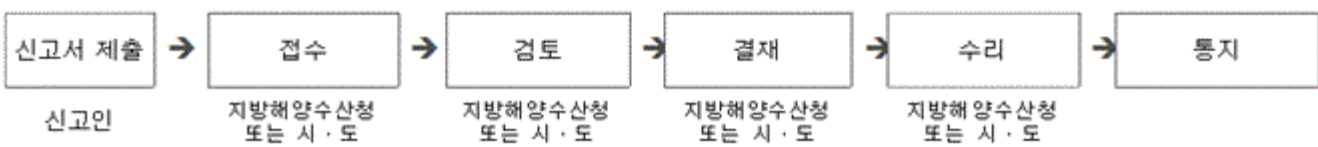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시 · 도지사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항만시설의 공정 현황
2.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항만시설의 도면 및 사진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 7. 4.>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 신청서

※ 책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3일 |
| 신청인 |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시설의 명칭 | |
| | 소 재 지 | |
| | 사업허가일 | |
| | 사업준공일 | |
| | 사용목적 | |
| | 사용규모 | |
| | 사용기간 | |

「항만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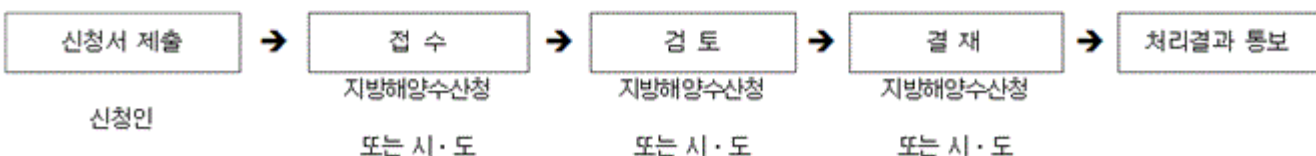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 수수료 |
| | 2. 축척 1천200분의 1의 사용위치 실측도 | 없 음 |

처 리 절 차



토지매도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 | |
|------------|---------------------------|-------|--|--------------|--|--|--|
| 청구인 |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
| | 주소(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전화번호 | | | |
| 항만배후단지의 명칭 | | | | | | | |
| 매도청구
내용 | 매도청구의 목적
및 필요성 | | | | | | |
| | 위치 | | | | | | |
| | 면적 | | | | | | |
| | 매도청구 대상
토지의 활용 용도 | 대상 토지 | | | | | |
| 활용 용도 | | | | | | | |
| 개발시설 | | | | | | | |
| 유치시설 | | | | | | | |

「항만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또는 같은 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의 매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귀하

| | | |
|------|-----------------------|-----------|
| 첨부서류 | 매도청구한 토지의 예상 매각가격 산출서 | 수수료
없음 |
|------|-----------------------|-----------|

■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4.>

전용 목적 토지·항만시설의 임대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 3일 |
|------|---------------------------|---|------|----|
| 임대인 |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 | 주소(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임차인 |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 | 주소(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신청내용 | 임대 목적 | [] 항만에서 일하는 사람 및 항만이용자의 편의증진
[] 액체화물을 하역하거나 이송하기 위한 시설(계류시설을 포함한다)
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 | |
| | 임대 목적물 | | | |
| | 임대 금액 | | | |

그 밖의 특이사항

「항만법」 제18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비관리청 전용목적 토지·항만시설의 임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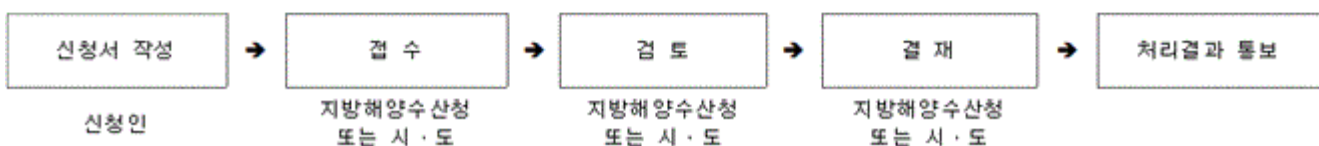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귀하

| | | |
|------|-------------|-----------|
| 첨부서류 | 임대계약서 사본 1부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2. 7. 4.>

양수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 3일 |
|------|---------------------------|---|------|----|
| 양도인 |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 | |
| | 업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 | 주소(법인의 경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양수인 |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 | |
| | 업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 | 주소(법인의 경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양수내용 | 토지 또는 항만 시설의 명칭 | | | |
| | 위치 | | | |
| | 양수 사유 | ☐ 준공확인증명서 발급일부터 10년 경과
☐ 상속 또는 법인의 분할·합병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 파산선고로 인한 처분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처분
☐ 비관리청(법인은 제외합니다)이 항만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항만시설의 전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 「항만법」 제72조에 따른 입주계약의 해지로 인한 처분
☐ 그 밖에 관리청이 인정하는 사유 | | |
| | 취득일 | | | |
| | 양수가액 | | | |
| | | | | |

「항만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 또는 항만시설의 양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시·도지사

| | | |
|------|--|-----------|
| 첨부서류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양수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의 명칭
2. 양수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의 위치
3. 양수 사유 및 취득일
4. 양수가액
5. 양도자 정보(성명, 주소 및 업종 등)
6. 양수자 정보(성명, 주소 및 업종 등)
7. 그 밖에 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 | | | | | | | |
|---------------|---|-------------------------|---|-------------------------|---|-------------------------|---|---------|
| 신고서 작성
신고인 | → | 접수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 → | 검토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 → | 결재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 → | 처리결과 통보 |
|---------------|---|-------------------------|---|-------------------------|---|-------------------------|---|---------|

■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항만대장

| 항만명 | | | | | 위치 | | 항종 | | | 개항 연월일 | | | | | | | | |
|------------------|----------|-------------|------|-----------------|-------|----------------|-------------|---------------|-----------------|-------------|----------------|----------------|------------|----------|----|----------|----------|----|
| 항계 | | | | | 조위 | 최대만조
면적 | 삭망평균
만조위 | 평균
수위 | 최대
간조위 | 삭망평균
간조위 | 항내
수면적 | 정온
수면적 | 최대
풍속풍향 | 최대
파고 | 비고 | | | |
| | | | | | | m ² | m | m | m | m | m ² | m ² | m/sec | m | | | | |
| 현
재
시
설 | 접안
시설 | 명칭 | 구조 | 연장 | 투자액 | 시설
연도 | 수심 | D/W/T
계선능력 | N/T
하역
능력 | 임항
철도 | 횃간
등수 평수 | | 야적
장 | 급수
시설 | 조명 | 임항
도로 | 하역
시설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준
설 | 연간자연
매물량 | | 연도별 준설실적 및 준설계획 | | | | | | | | | | | | | | |
| | | 년 | | 년 | | 년 | | 년 | | 년 | | 년 | | 잔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
래
계
획 | 명칭 | 위치 | 전체계획 | | 연도별계획 | | | | | | | | | | | | | |
| | | | 사업량 | 금액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4mm × 257mm[인쇄용지(특급) 120g/m²]

| 능력 | 연도
시설별 | 현재(년) | | | | | 종전(시설 변경연도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년 | | | | | 년 | | | | | 년 | | | | |
| | | 안벽 | 소형선
부두 | 잔교 | 물받
등 | 계 | 안벽 | 소형선
부두 | 잔교 | 물받
등 | 계 | 안벽 | 소형선
부두 | 잔교 | 물받
등 | 계 | 안벽 | 소형선
부두 | 잔교 | 물받
등 | 계 |
| 1. 하역
(천톤) | 능력 | | | | | | | | | | | | | | | | | | | | |
| | 실적 | | | | | | | | | | | | | | | | | | | | |
| 2. 동시접안
능력(척) | | | | | | | | | | | | | | | | | | | | | |
| 5백톤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3천톤 ♪ | | | | | | | | | | | | | | | | | | | | | |
| 5천톤 ♪ | | | | | | | | | | | | | | | | | | | | | |
| 7천톤 ♪ | | | | | | | | | | | | | | | | | | | | | |
| 1만톤 ♪ | | | | | | | | | | | | | | | | | | | | | |
| 2만톤 ♪ | | | | | | | | | | | | | | | | | | | | | |
| 5만톤 ♪ | | | | | | | | | | | | | | | | | | | | | |
| 5만톤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3. 묘박능력(척) | | 항 | 항 | 항 | 항 | 계 | 항 | 항 | 항 | 항 | 계 | 항 | 항 | 항 | 항 | 계 | 항 | 항 | 항 | 항 | 계 |
| 5백톤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3천톤 ♪ | | | | | | | | | | | | | | | | | | | | | |
| 5천톤 ♪ | | | | | | | | | | | | | | | | | | | | | |
| 7천톤 ♪ | | | | | | | | | | | | | | | | | | | | | |
| 1만톤 ♪ | | | | | | | | | | | | | | | | | | | | | |
| 2만톤 ♪ | | | | | | | | | | | | | | | | | | | | | |
| 5만톤 ♪ | | | | | | | | | | | | | | | | | | | | | |
| 5만톤 이상 | | | 법제처 | | | | | | | | | | | | | | | | | | |

| 구분
시설별 | 현재(년) | | 종전(시설 변경연도 기준) | | | | | | | | | |
|--------------|-----------|------------|--------------------------------|-------|------------|--------------------------------|-------|------------|--------------------------------|-------|------------|--------------------------------|
| | 수 량(개) | | 연 장(m) | | 년 | | | 년 | | | 년 | |
| | 수량(개) | | 연장(m) | | 수량(개) | | 연장(m) | | 수량(개) | | 연장(m) | |
| 4. 안벽 | | | | | | | | | | | | |
| 5. 소형선 부두 | 동수
(동) | 면적
(㎡) | 능력(톤) | 동수(동) | 면적
(㎡) | 능력(톤) | 동수(동) | 면적
(㎡) | 능력(톤) | 동수(동) | 면적
(㎡) | 능력(톤) |
| 6. 잔교 | | | | | | | | | | | | |
| 7. 돌핀 등 | | | | | | | | | | | | |
| 8. 횃간 | | | | | | | | | | | | |
| 9. 야적장 | | | | | | | | | | | | |
| 10. 저목장 | | | | | | | | | | | | |
| 11. 저탄장 | | | | | | | | | | | | |
| 12. 위험물저장장 | 척(대)
수 | 마력
(규격) | 총톤수
(G/T)
시간당능력
(T/H) | 척(대)수 | 마력
(규격) | 총톤수
(G/T)
시간당능력
(T/H) | 척(대)수 | 마력
(규격) | 총톤수
(G/T)
시간당능력
(T/H) | 척(대)수 | 마력
(규격) | 총톤수
(G/T)
시간당능력
(T/H) |
| 13. 예선(이접안용) | | | | | | | | | | | | |
| 14. 예인선(하역용) | | | | | | | | | | | | |
| 15. 기중기선 | | | | | | | | | | | | |
| 16. 부선 | | | | | | | | | | | | |
| 17. 양곡하역기 | | | | | | | | | | | | |
| 18. 고철하역기 | | | | | | | | | | | | |
| 19. 컨트리크레인 | | | | | | | | | | | | |
| 20. 석탄하역기 | | | | | | | | | | | | |
| 21. 시멘트하역기 | | | | | | | | | | | | |
| 22. 기중기 | | | | | | | | | | | | |
| 23. 지게차 | | | | | | | | | | | | |
| 24. 페이로더 | | | | | | | | | | | | |
| 25. 그 밖의 하역기 | | | | | | | | | | | | |

364mm × 257mm[인쇄용지(특급) 120g/㎡]

| 연도
산업구분 | 현재(년) | 종전(최근 5년간) | | | | |
|--|-------|------------|---|---|---|---|
| | | 년 | 년 | 년 | 년 | 년 |
| ① 임해도시인구(명) | | | | | | |
| ② 항만근로자(명)
가. 해상
나. 부두
다. 기타
라. 계 | | | | | | |
| ③ 운수업(화물자동차)
가. 인구(명)
나. 대수(대)
다. 적재능력(M/T) | | | | | | |
| ④ 수산업
가. 인구(명)
나. 어선(척)
다. 어획량(톤) | | | | | | |

364mm × 257mm[인쇄용지(특급) 120g/㎡]

| | | | | | | | | | | | | |
|--|-----|-----|-----|-----|-----|-----|-----|-----|-----|-----|-----|-----|
| ⑤ 임해공장생산량(M/T)
가. 해송량
나. 육송량
다. 계 | | | | | | | | | | | | |
| ⑥ 후방수송화물량(M/T)
가. 철로
나. 공로
다. 항공
라. 내륙수로
마. 계 | | | | | | | | | | | | |
| ⑦ 선박수리시설(척) | 건선거 | 조선대 | 건선거 | 조선대 | 건선거 | 조선대 | 건선거 | 조선대 | 건선거 | 조선대 | 건선거 | 조선대 |
| 5백톤 미만 | | | | | | | | | | | | |
| 3천톤 미만 | | | | | | | | | | | | |
| 5천톤 미만 | | | | | | | | | | | | |
| 1만톤 미만 | | | | | | | | | | | | |
| 2만톤 미만 | | | | | | | | | | | | |
| 5만톤 미만 | | | | | | | | | | | | |
| 5만톤 이상 | | | | | | | | | | | | |

364mm × 257mm[인쇄용지(특급) 120g/㎡]

항만관리법인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20일 |
| 신청인 |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주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 |
| |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 |
| | 임원 및 직원의 수 | |
| | 신청 이유 | |
| | 사업예정지역(항만명) | |
| | 법인의 사업범위(종류)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 |

「항만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관리법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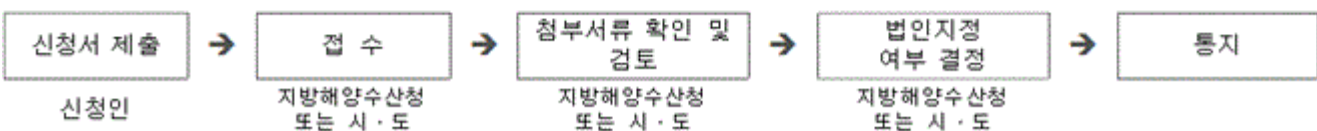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임원의 성명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3. 사업계획서(화물에 대한 경비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 근거를 포함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1. 6. 30.>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60일 |
|------|-----|----------|

| | | |
|-----|---------------------------|--------------|
| 신청인 |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

신 청 내 용

| | | | | | | | | |
|---------------|----------------|----------|-----|---------|----------------|----|----|----|
| 사 업 명 칭 | | | | | | | | |
| 사 업 위 치 | | | | 사 업 면 적 | | ㎡ | | |
| 사 업 목 적 | | | | | | | | |
| 시 행 방 법 | | | | 사 업 기 간 | | ~ | | |
| 토지이용계획
(㎡) | 용도 별 | | | | | | | |
| | 면적 | | | | | | | |
| 기반시설 계획 | 시설 별 | | | | | | | |
| | 규모 | | | | | | | |
| 자금조달계획 | 국내
투자
자금 | 자기
자금 | 융자금 | 소계 | 외국
투자
자금 | 차관 | 기타 | 소계 |
| | | | | | | | | |
| 주요변경 사항 | | | | | | | | |

「항만법」 제51조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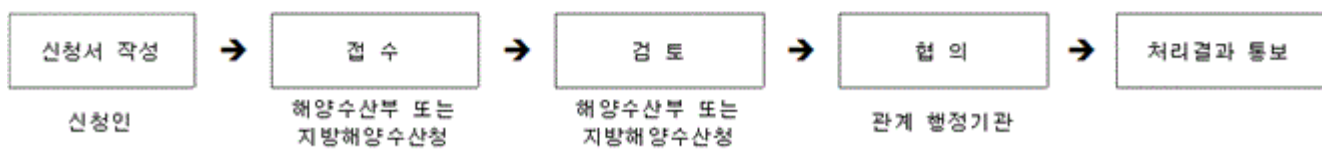
귀하

| | |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
| 법제처 | | 업 |

첨부서류

1. 「항만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2. 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
3.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토지의 용도를 기록한 지도를 말합니다)
4.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5.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자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합니다)
6.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 및 이에 따른 조치 계획(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 및 이행 계획서(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8.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사업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9.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에 대한 법 제61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계획서를 포함합니다)
10. 항만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이전·철거·귀속·이관 및 양여 등에 관한 조서
11. 존치하려는 시설물의 명세서
12. 「항만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3.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피해영향조사서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준공확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20일 |
|------|-----|----------|

| | | |
|-----|---------------------------|--------------|
| 신청인 |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
| 신청내용 | 사업의 명칭 | 실시계획승인일 |
| | 사업구역의 위치 및 준공 면적 | |
| | 시설의 개요 | |
| | 총사업비
천원 | 시행기간 |

「항만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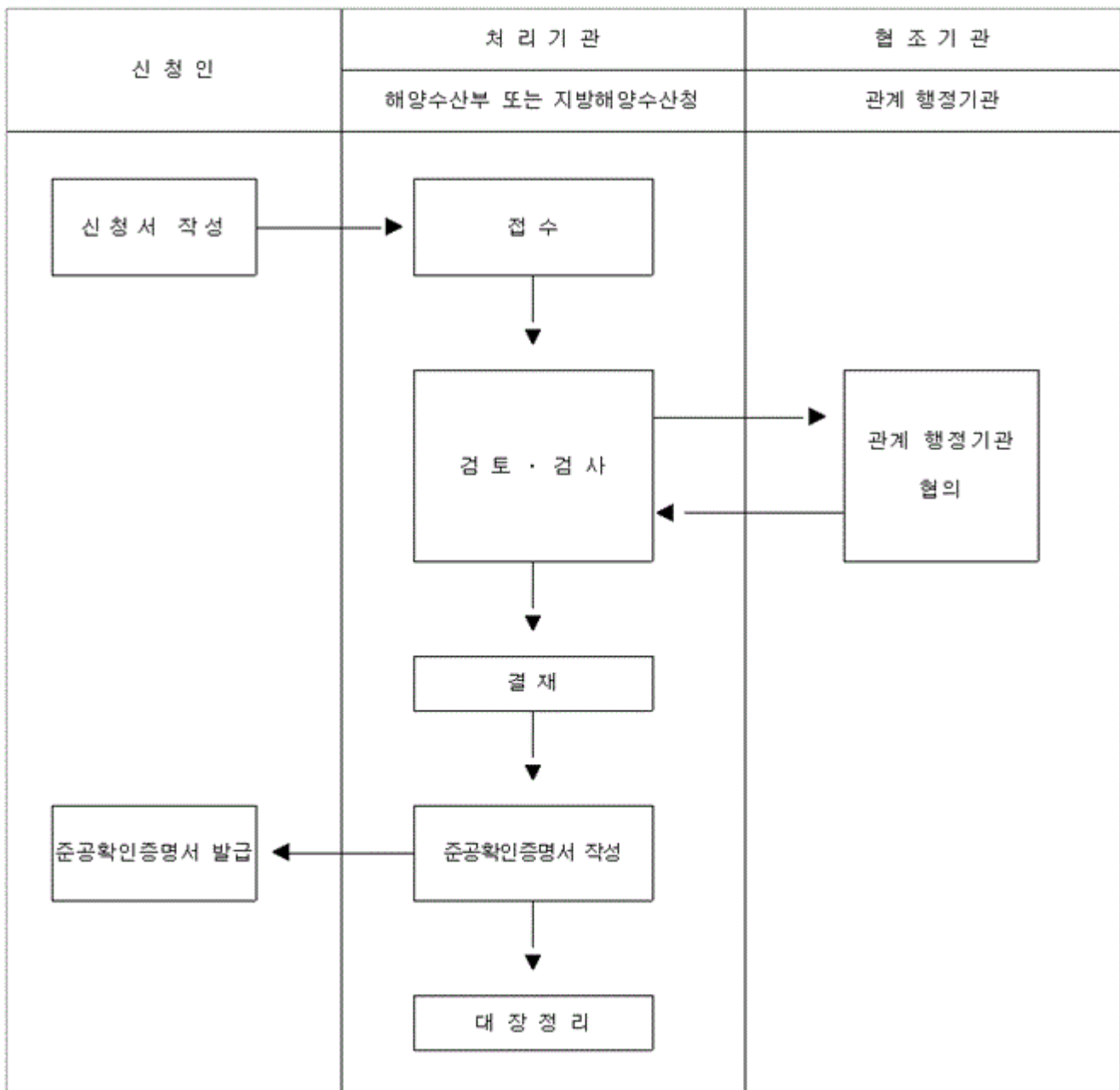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시장·군수·구청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신·구지적대조도 및 시설의 대비표
6. 총사업비 명세서 | 수수료
없음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지적도 |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 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준공확인증명서

성명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귀하가 시행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항만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준공확인을 하고 본 증서를 교부합니다.

1. 사업명
2. 실시계획 승인일
3. 위치
4. 시행면적 m^2
5. 준공 연월일
6. 준공확인 사항(확정측량조서 및 지적도 별첨)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작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준공 전 사용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
| 신고인 |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 주소(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 |
| 사업의 명칭 | | | |
| 소재지 | | | |
| 사업 개요 | 승인 연월일 | 년 월 일 | |
| | 사업 내용 | | |
| 준공 전 사용대상시설 | | | |
| 준공 전 사용사유 | | | |
| 준공 전 사용기간 | | | |
| 전체공사의 준공예정일 | | | |

「항만법」 제58조제5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준공 전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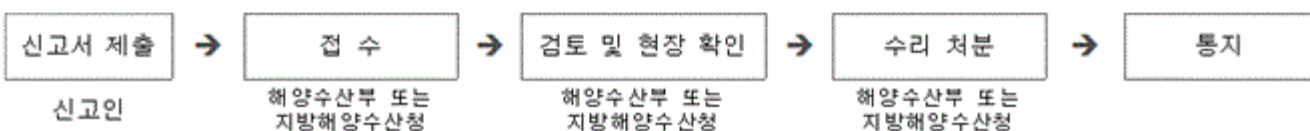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 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2.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3.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5. 4. 1.>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60일 |
| 신청인 | 기관(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 |

「항만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의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1종 항만배후단지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계획서 | 수수료
없음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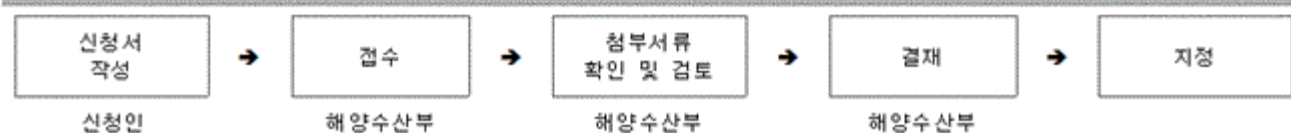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1종 항만배후단지 [] 입주계약 [] 변경계약 신청(확인)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 7일 |
| 신청인 | 회사명 | | 대표자 성명 | |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의 소재지) | | | |
| | 담당자 성명 및 전자우편 주소 | | | |
| 사업내용 | 사업명 | | | |
| | 투자규모(자본금) | 원
(US \$ 상당) | 외국인 투자비율 및 투자금액 | |
| |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단위) | | 주생산품 | |

변경계약사항

「항만법」 제7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의 체결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관리기관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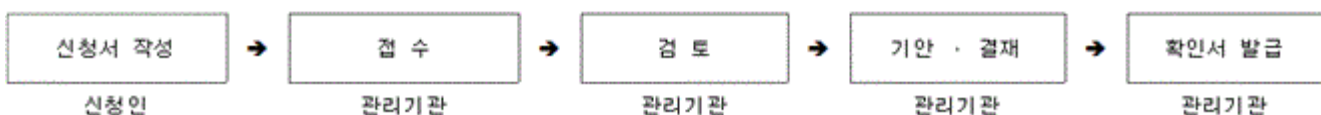
| | | |
|------|---|-----------|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항만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해당 사업에 관한 인가·허가·면허·등록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5. 관련 법령에 따른 입주자격의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 수수료
없음 |
|------|---|-----------|

「항만법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의 체결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관리기관장 인

처리절차



■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토 지 [] 양도계획서 [] 공장등 [] 처분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7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 주소(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 |
| 양도·
처분
내용 | 소재지 | | |
| | 용지 면적(㎡) | 건축 면적(㎡) | 건설 공정 % |
| | 기준공장면적을 달성비율(제조업 공장 설립 완료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
| | 양도·처분가격
(백만원) | 대지가격 | 건물 감정평가액 |
| | 대금 지급조건 | | |
| 양도·
처분 사유 | | | |

「항만법」 제7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도계획서(처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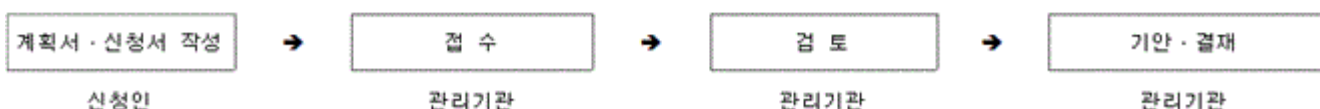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관리기관장 귀하

| | |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양도 또는 처분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세서
2.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관리기관이 「항만법」 제6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관리기관 담당자
확인 사항 |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 | |

처리절차



| | |
|--|--------------|
| 제 호 | |
| 행정처분 통지서 | |
| 사업시행자
(피허가자) | |
| 주소 | (전화번호:) |
| 행정처분 내용 | |
| 공사중지 또는
항만시설
사용중지 등의
기간 | 년 월 일 로부터 개월 |
| 행정처분 사유 | |
| <p>「항만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처분을 함을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p> <div style="border: 2px solid orange; display: inline-block; padding: 5px; margin-left: 10px;">직인</div> | |

토지 출입[]
일시 사용[] 통지서
장애물 제거·변경[]

| | | |
|----------------------------|----------------------------------|------|
| 통지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출입, 사용 또는 장애물의
제거·변경 구역 | | |
| 출입, 사용 또는 장애물의
제거·변경 목적 | | |
| 출입, 사용 또는 장애물의
제거·변경 기간 | . . .부터
(일간)
. . .까지 | |
| 출입, 사용 또는 장애물의
제거·변경 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
| 제거·변경되는 장애물의
종류 | | |

「항만법」 제8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 귀하

제 호

허 가 증

성 명

생년월일(남/녀)

주 소

위치 또는 장소

허가내용

기 간부터까지

「항만법」 제8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항만개발 사업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조사·측량 등을 하게 하기 위해 위 사람에게 토지에의 출입 등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앞면)

| | | | |
|--|---|---------------------|----------------|
| 토지출입증 | | 사진
(3.5cm × 3cm) | |
| 성명 | | | |
| 주소 | | | |
| 출입목적 | | | |
| 출입시간 | 시 | 분부터 | 시 분까지 |
| 유효기간 | . | . | 부터
까지 (일간) |
| <p>위 사람은 「항만법」 제8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 .</p> <p style="text-align: center;">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p> <p style="text-align: center;">(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 귀하</p> | | | |

74mm × 52mm [인쇄용지(특급) 120g/㎡]

(뒷면)

| |
|---|
| <p style="text-align: center;">주의사항</p> <p>1. 이 증표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할 때에는 항상 지녀야 합니다.</p> <p>2. 이 증표는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내보여야 합니다.</p> <p>3. 이 증표는 대여하지 못합니다.</p> <p>4. 이 증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에 신고해야 합니다.</p> <p>5.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직인이 없는 것은 무효입니다.</p> |
|---|

■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재결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20일 |
|------|-----|----------|

| | | |
|-----|--------|----------|
| 신청인 | 성명(명칭)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
|-----|--------|----------|
| 상대방 | 성명(명칭)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
| 처분 | 명 칭 |
| 내용 | 소재지 |

손실발생의 사실

손실보상액

재결신청자가 산출한 손실액

협의의 경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항만법」 제9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귀하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5일 |
| 신고인 |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 주소(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 (전화번호:) | | | |

신 고 사 항

| | | | |
|--------------|--|---------|--|
| 행위허가(신고)내용 | ☐ 건축물의 건축 ☐ 인공 구조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 |
| | ☐ 토석의 채취 | | |
| | ☐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 | | |
| | ☐ 토지분할 ☐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 |
| | ☐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 | |
| 위 치 | | | |
| 면 적 (㎡) | | | |
| 근 거 법 령 | | | |
| 허 가 일 자 | 년 월 일 | 허 가 권 자 | |
| 공사(사업) 진행 사항 | 공사(사업) 진척도 % | | |

「항만법」 제9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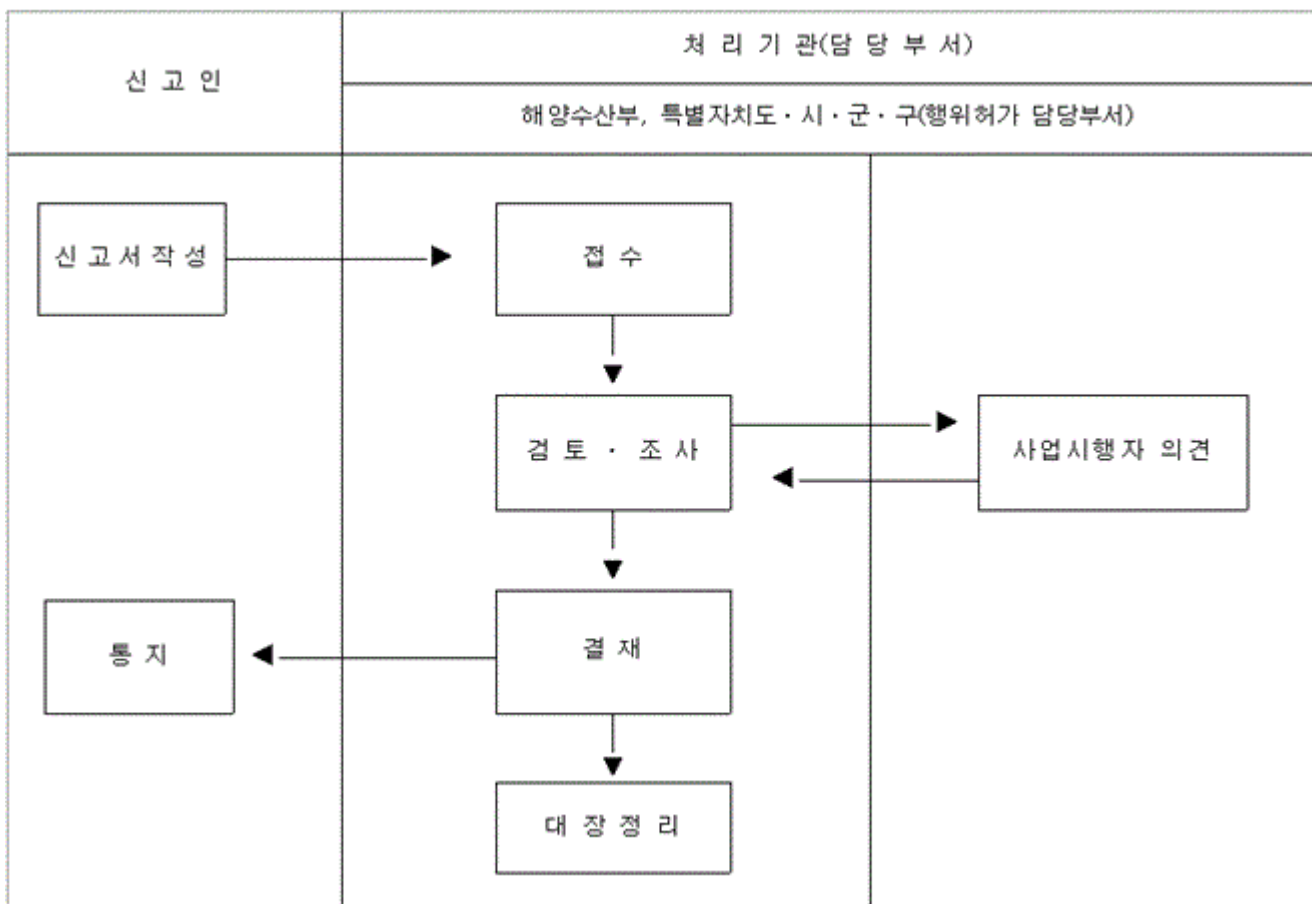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사업시행계획서
2. 사업진행사항(관계 법령에 따른 행위허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권리·의무 이전 인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신청인 |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 주소(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 |
| 신청내용 | 허가(승인)일 및 근거 | | |
| | 허가(승인)목적 및 개요 | | |
| | 준공기간 | | |
| | 공사공정률 | | |
| | 이전 사유 | | |

「항만법」 제10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의무의 이전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시·도지사

| | | |
|------|--|-----------|
| 첨부서류 | 해당 권리·의무와 관련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 | | | |
|-------------|-----------------------------|-----------------------------|-----------------------------|-----------------------------|
| 신청서 제출
→ | 접 수
→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 전체공정 검토
→ | 결재 |
| 신청인 |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 활용품)]



어촌·어항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051 - 773 - 5651, 5652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과) 051 - 773 - 6048, 61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漁港)의 지정·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5. 23., 2012. 10. 22., 2013. 3. 23., 2014. 3. 24., 2015. 6. 22., 2017. 11. 28., 2019. 8. 27., 2020. 3. 24., 2026. 4. 21.>

1. “어촌”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어촌종합개발사업”이란 어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연안시설의 정비, 수산자원의 조성, 수산물 유통 및 가공 시설의 확충 등 수산업생산기반 시설의 개선·확충 사업
 - 나. 어촌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생활환경의 개선 및 관련 부대 사업
 - 다. 어촌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촌의 자연경관, 특산물 또는 그 지역 특유의 풍속 등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
3. “어항”이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제1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가. 국가어항: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어장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 나. 지방어항: 이용 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
 - 다. 어촌정주어항(漁村定住漁港): 어촌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
 - 라. 마을공동어항: 어촌정주어항에 속하지 아니한 소규모 어항으로서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항포구
4. “어항구역”이란 어항의 수역(水域) 및 육역(陸域)을 말한다.
5. “어항시설”이란 어항구역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어항구역 밖에 있는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17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기본시설

- 1) 방파제(防波堤)、방사제(防砂堤)、파제제(波除堤)、방조제(防潮堤)、도류제(導流堤)、수문、갑문(閘門)、호안(護岸)、둑、돌제(突堤)、흉벽(胸壁) 등 외곽시설
- 2) 안벽(岸壁)、소형선부두、계선부표(繫船浮標)、계선말뚝、잔교(棧橋)、부잔교(浮棧橋)、선착장、선양장(船揚場) 등 계류시설(繫留施設)
- 3) 항로(航路)、정박지、선회장(船回場) 등 수역시설

나. 기능시설

- 1) 철도、도로、다리、주차장、헬리포트 등 수송시설
- 2) 항로 표지, 신호、조명 시설 등 항행보조시설
- 3) 어선 건조장、수리장、검사장, 어구 건조장, 어구 제작장、수리장, 선양시설, 야적장, 기자재 창고 등 어선、어구 보전시설
- 4) 급수(給水)、급빙(給氷)、급유(給油) 시설, 전기수용설비、선수품보급장(船需品補給場) 등 보급시설
- 5) 수산물시장、수산물위판장、수산물직매장、수산물집하장 및 활어(活魚) 일시 보관시설 등 수산물의 유통、판매、보관 시설과 이러한 시설에 바닷물을 끌어오거나 내보내기 위한 시설
- 6) 하역기계, 제빙(製氷)、냉동、냉장 시설, 수산물 가공공장 등 수산물 처리、가공 시설
- 7) 육상 무선전신、전화시설, 어업 기상신호시설 등 어업용 통신시설
- 8) 어항관리시설、해양관측시설, 관계 법령에 따른 선박출입항 신고기관 등 해양수산 관련 공공시설
- 9)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오수、폐수 처리시설, 도수시설(導水施設), 폐유、폐선(廢船) 처리시설 등 어항정화시설
- 10) 수산종자생산시설, 수산종자 배양장 등 수산자원 육성시설
- 11) 기능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한 업무용시설

다. 어항편익시설

- 1) 진료시설、복지회관、체육시설 등 복지시설
- 2) 전시관、도서관、학습관、공연장 등 문화시설
- 3) 귀어업인 및 외국인근로자 등 수산업 종사자의 주거시설 및 교육시설
- 4) 광장、조경시설 등 어항의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
- 5) 유람선、낚시어선、모터보트、요트、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
- 6) 지역특산물 판매장,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및 쇼핑센터 등 관광객 이용시설
- 7) 숙박시설、목욕시설、오락시설 등 휴게시설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편익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와 수역

6. “어항개발사업”이란 제19조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어항기본사업: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어항시설의 신설 및 이에 부수되는 준설·매립 등의 사업

나. 어항정비사업: 어항시설의 변경·보수·보강·이전·확장 및 이에 부수되는 준설·매립 등의 사업

다. 어항환경개선사업: 어항정화 및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항환경개선사업

라. 레저관광기반시설사업: 해양관광 지원을 위한 제5호다목4)에 따른 레저용 기반시설 설치 및 보수 등의 사업

7.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이란 어항 통계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어항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전자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8. “폐기물”이란 폐어구(廢漁具), 쓰레기, 연소물(燃燒物), 오염 침전물, 폐유, 폐산(廢酸), 폐(廢)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9. “어촌·어항재생”이란 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낙후된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하여 접근성 및 정주여건 개선, 수산·관광 등 산업발전,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하여 사회·문화·경제·환경적으로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10. “어촌·어항재생사업”이란 어촌·어항재생을 위하여 제47조의3에 따른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제2조의2(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과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3. 24.]

제2장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제3조(기초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어항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어촌의 분포·인구변동의 추이, 어촌의 생활여건의 변화, 어촌의 교통환경의 변화, 어항시설의 변동 등 어촌·어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2. 22.>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이나 어촌·어항과 관련한 정책수립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정한 어촌 또는 어항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의 내용·조사방법, 조사결과의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제4조(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촌의 소득증대와 어촌·어항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10년마다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3. 24.>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9. 8. 27., 2020. 12. 22.>

1. 어촌·어항의 종합적·체계적 발전을 위한 중기·장기 정책방향
2. 어촌·어항의 연도별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어촌종합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4. 어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5. 어촌·어항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6. 어촌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률에 따른 어촌지역 개발사업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0. 3. 24.>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0. 3. 24.>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 1. 15., 2020. 3. 24.>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9. 1. 15.>

[전문개정 2011. 7. 14.]

제4조의2(기본계획의 변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3. 24.]

제5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용도지역 등이 지정되어 있는 어촌·어항에 대하여는 해당 계획

또는 용도지역 등의 범위에서 이를 수립·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어항의 종합적 개발 또는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계획이나 지정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을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8. 27.>

[전문개정 2011. 7. 14.]

제3장 어촌종합개발

제6조(어촌종합개발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어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

② 어촌종합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1. 어촌종합개발의 기본구상 및 개발방향
2. 어촌종합개발사업 권역의 선정 현황
3. 어촌종합개발사업의 권역별 개발 및 투자 계획
4.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효과 및 전망
5.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계획
6. 그 밖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추진절차 및 사후관리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14.]

제7조(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어촌종합개발사업 권역에 대하여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전국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등의 이유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에 관하여 직접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해당 사업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제19조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에 배후어촌개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14.]

제8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제7조제5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제7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동의 또는 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승인·동의 또는 협의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 14., 2014. 3. 24., 2020. 3. 31., 2026. 4. 2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 및 마목의 계획으로 한정하고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이에 부합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인가
4.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사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6.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면에서의 공사시행의 승인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8.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12.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13.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14.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동의·승인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국유림의 입목벌채등의 허가
15.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 등의 허가
17.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8.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전문개정 2011. 7. 14.]

제9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5. 29., 2018. 4. 17.>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3.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범위에서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 ④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해당 사업지역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7. 14.]

제10조(준공확인) 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시행계획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감리 등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1. 시행계획에 대하여 제9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2. 시행계획에 대하여 제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결과 해당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준공확인증명서를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그 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 전 사용을 허가받거나 준공 전 사용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11.>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12. 11.>

⑥ 제3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에 대하여 준공 전 사용을 허가하거나 준공 전 사용 신고를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8. 12. 11.>

1. 준공 전 사용으로 인하여 앞으로 시행될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2. 준공 전 사용을 하려는 토지 및 시설의 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는지 여부

⑦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8. 12. 11.>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2. 「하천법」 제30조제7항에 따른 준공인가
3.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전문개정 2011. 7. 14.]

제11조(조사·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측량·설계 및 공사감리를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어촌종합개발 및 어항개발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7.>

②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측량·설계 및 공사감리를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14.]

제12조(국유지·공유지의 양여 등)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조성되는 시설 또는 토지가 기존의 도로, 배수로, 독, 도랑, 하천 및 어항 부지 등의 용도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 또는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시설 또는 토지를 기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유·공유의 도로, 배수로, 독, 도랑, 하천 및 어항 부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국유 또는 공유 일반재산을 「국유재산법」 제43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14.]

제13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관리)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또는 토지(이하 “어촌종합개발시설”이라 한다)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관리한다.

②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14.]

제14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어촌종합개발시설을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 하거나 다른 자에게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어촌종합개발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사용·양도 또는 임대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용도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제15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폐지)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어촌종합개발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폐지하려는 어촌종합개발시설로부터 이익을 받고 있는 어업 등이 폐지되거나 그 대체시설이 완비되었을 때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어촌종합개발시설의 파손·매몰 등으로 시설보수(施設補修)의 경제성이 없어졌을 때
3. 지속적인 오염원(汚染源)의 유입,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해양이 장기간 오염되거나 오염될 전망이어서 어촌종합개발시설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졌을 때

[전문개정 2011. 7. 14.]

제4장 어항개발 <개정 2011. 7. 14.>

제1절 어항의 지정 및 어항개발계획

제16조(어항의 지정권자)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지정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항을 지정한다. <개정 2012. 5. 23., 2013. 3. 23., 2019. 8. 27., 2020. 2. 18., 2021. 1. 12., 2026. 3. 5.>

1. 국가어항: 해양수산부장관
2. 지방어항: 시·도지사. 다만,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3.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 시장·군수·구청장

[전문개정 2011. 7. 14.]

제17조(어항 등의 지정·변경 및 해제) ① 지정권자는 어항의 경우에는 어항의 명칭·종류·위치 및 구역을 정하여 지정하고,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의 경우에는 소속 어항, 시설의 명칭·종류·위치를 정하여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항 및 어항시설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방어항을 지정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을 지정하려면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2. 18.>

④ 지정권자는 어항의 경제적·사회적·물리적 여건이 변하거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대도시의 경우에는 대도시 시장을 말한다)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어항을 지정·변경 또는 지정을 해제하려면 국가어항의 경우에는 그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방어항의 경우에는 그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⑥ 지정권자는 어항으로 지정하려는 구역에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또는 수면의 이용에 관한 지구·지역·구역 등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지정권자는 어항 또는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을 지정·변경 또는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제18조(어촌관광구역 설정 등) ① 지정권자는 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항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에는 해양관광·레저용 선박의 계류시설이나 관광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14.]

[제목개정 2026. 4. 21.]

제19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지정권자는 어항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미리 해당 어항의 시설 및 이용 현황, 어항시설의 안전상태 등을 조사·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둘 이상의 지방어항·어촌정주어항 또는 마을공동어항을 포함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3. 3. 23., 2026. 4. 21.>

② 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수립하고, 어항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0. 22., 2020. 12. 22.>

1. 어항시설에 관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어항시설기본계획
2. 어항시설의 변경·보수·보강·이전·확장 등 어항정비계획
3. 어항정화 및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항환경개선계획
4. 제2조제5호다목4)에 따른 레저용 기반시설 설치 등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레저관광개발 계획

5. 어항시설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편익 증진계획

③ 지정권자(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같다)는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발하려는 어항의 배후 어촌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지정권자는 어항개발을 통한 지역개발 및 어촌관광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어항이 수산, 교통물류, 방재(防災), 어촌관광레저 또는 해역관리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어항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어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지정권자는 어항개발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어항의 여건 변화 또는 어항의 효율적 개발·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어항개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6. 4. 21.>

⑥ 지정권자는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7. 14.]

제20조(어항개발계획의 내용) 어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12. 22.>

1. 어항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2. 어항시설의 입지·종류·규모 및 배치계획
3. 기본시설의 표준 단면
4. 연도별 투자계획 및 효과
5. 어항시설의 교통접근성 향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 7. 14.]

제21조(어항개발계획수립 등의 협의) ① 지정권자는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대도시의 경우에는 대도시 시장을 말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18.>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방어항에 대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2014. 3. 24., 2020. 2. 18.>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18.>

[전문개정 2011. 7. 14.]

제2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9조제6항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하여 고시한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과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2. 18.>

[전문개정 2011. 7. 14.]

제2절 어항개발사업

- 제23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 ① 어항개발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권자가 시행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1.>
- ② 지정권자가 아닌 자(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한다)가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로부터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어항시설의 보수·보강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3. 24.>
1. 제4항 단서에 따른 어항시설의 공사
 2. 방충재(防衝材) 또는 콘크리트 포장의 보수·보강 공사 등 어항시설의 안전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공사
- ③ 지정권자가 아닌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항개발사업(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 ④ 지정권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 해당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와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여객승강용시설, 어항정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2항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거친 사업시행자는 어항개발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21.>
- ⑥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을 허가·협의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하며,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21.>

⑦ 어항개발사업은 어항개발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21.>

⑧ 지정권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6. 4. 21.>

[전문개정 2011. 7. 14.]

제24조(어항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항시설의 내진설계(耐震設計)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에 관한 기준 외에 어항시설 중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기본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에 대한 기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어항시설을 설계하는 자나 제23조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어항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에 관한 기준과 제2항에 따른 기술 기준에 따라 어항시설을 설계하거나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에 관한 기준과 제2항에 따른 기술 기준에 따라 어항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지정권자는 이를 제19조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25조(사업대행) 지정권자가 아닌 자로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지정권자”라 한다)와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와 협의를 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어항개발사업을 지정권자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전문개정 2011. 7. 14.]

제25조의2(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어항개발사업시행자는 어항의 육역에 관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어항개발사업시행자는 어항개발사업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23조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세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의 공고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6. 4. 21.>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裁決)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항개발계획에서 정한 어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3. 24.]

제25조의3(준공확인) ① 비지정권자 또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와 협의를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 지정권자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감리 등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결과 해당 어항개발사업이 허가 또는 협의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준공확인증명서를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비지정권자 또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와 협의를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그 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 전 사용을 허가받거나 준공 전 사용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정권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지정권자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 발급의 효과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준공 전 사용 허가 또는 신고수리 시 고려사항에 관하여는 제10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26조(어항시설의 귀속 등) ① 비지정권자가 시행한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제23조제4항에 따른 허가조건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다만,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비지정권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투자한 총사업비(總事業費)의 범위에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기능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 부지
 2. 제2조제5호다목1) 및 2)에 따른 복지 및 문화 시설용 부지
 3. 제2조제5호다목4)부터 6)까지의 규정에 따른 레저용 기반시설용, 관광객 이용시설용 및 휴게시설용 부지
 4.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부지 외의 토지
- ③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귀속된 토지로서 제2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지정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 ④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총사업비 중 제2항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가액(價額)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비지정권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지정권자는 미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 ⑤ 지정권자는 제4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비지정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11.>
- ⑥ 지정권자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비지정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12. 11.>
- ⑦ 제4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비지정권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8. 12. 11.>
- ⑧ 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 및 비지정권자가 취득하는 토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12. 11.>
- ⑨ 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비지정권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정권자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그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용·수익 기간은 그 토지 또는 시설의 무상 사용·수익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8. 12. 11.>
- ⑩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영업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 또는 제23조제8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기존 어항시설에서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부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제공받는 토지에 한정하여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1., 2020. 3. 24., 2026. 4. 21.>
- [전문개정 2011. 7. 14.]

제27조(어항시설의 매각·양여) ① 지정권자는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정권자가 시행한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중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지정권자는 「국유재산법」 제4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를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공단체 또는 제23조에 따라 어항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법」 제4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에 따라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수자에게 해당 토지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24., 2019. 8. 27.>

③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항시설을 새로운 지정권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개정 2026. 4. 21.>

1. 국가어항의 지정이 해제되고 해당 어항이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또는 마을공동어항으로 지정된 경우
2. 지방어항의 지정이 해제되고 해당 어항이 국가어항, 어촌정주어항 또는 마을공동어항으로 지정된 경우
3. 어촌정주어항 또는 마을공동어항의 지정이 해제되고 해당 어항이 국가어항 또는 지방어항으로 지정된 경우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토지 매각대금 중 국가어항의 토지 매각대금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6. 22.>

[전문개정 2011. 7. 14.]

제28조(재산의 등기) 지정권자는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 중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른 어항시설을 제외한 토지 및 시설은 준공일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제29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 지정권자는 제26조제4항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이를 유지·관리하고, 해당 어항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이라 한다)를 해당 비지정권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14.]

제30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성질)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제31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등) ①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또는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지정권자가 갖추어 놓은 어항시설

관리운영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제32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 처분의 특례) 저당권이 설정된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은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7. 14.]

제33조(협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구역에서 「광업법」,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등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면허·허가 등을 하려면 미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전문개정 2011. 7. 14.]

제34조(준용 등)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 중 “제7조제5항”은 “제19조제6항”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은 “어항개발사업계획”으로, “제7조제3항”은 “제21조제1항”으로 보고, 제11조 중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어항개발사업시행자”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항개발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2018. 12. 11.>

[전문개정 2011. 7. 14.]

제3절 어항시설의 관리 및 사용

제35조(어항관리청 및 청항업무) ① 어항관리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5. 23.>

1.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2.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② 어항관리청은 어항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운영하고 어항발전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며 통계자료를 관리한다.

③ 어항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어항의 유지·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4. 17.>

1.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의 어항구역 중 수역의 폐기물을 수거하여 어항을 청정(淸淨)하게 유지하는 업무[이하 “청항업무”(淸港業務)라 한다]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3. 24., 2018. 4. 17.>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청항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항관리선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3. 24., 2018. 4. 17.>

[전문개정 2011. 7. 14.]

제36조(어항관리규정) 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어항관리규정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3. 17.]

제37조(어항관리협의회) ① 어항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에 관하여 어항관리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어항에 어항관리협의회를 둔다.

② 어항관리협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14.]

제38조(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자는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항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할 수 있는 기간은 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3. 24.>

1. 선박이 안벽·물양장·돌제·잔교·호안 등 기본시설에 접안(接岸)하거나 계류하려는 경우

2. 선박이 방파제 등 외곽시설의 내항 부분(접안장소는 제외한다)에 묘박(錨泊)하거나 정박하려는 경우

3. 기본시설이나 야적이 가능한 어항구역 안의 부지에 화물 등을 쌓아두거나 임시 구조물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4. 제26조제4항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또는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경우

② 어항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11.>

③ 어항관리청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12. 11.>

④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없이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6. 5. 29., 2018. 12. 11.>

1. 어선이 사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선박이 사용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해양수산 관련 단체 소유의 선박이 사용하는 경우
4. 지정권자가 해당 어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⑤ 어항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할 때에는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고, 어항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1.>

⑥ 어항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8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1., 2026. 4. 21.>

⑦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면 어항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1.>

⑧ 어항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의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의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제7항에 따른 협의의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의 기간을 10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8. 12. 11.>

⑨ 어항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 어항의 기능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8. 12. 11.>

⑩ 어항관리청이 국가어항 또는 지방어항에 대하여 어항시설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결과를 해당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1.>

⑪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12. 11.>

[전문개정 2011. 7. 14.]

제39조 삭제 <2016. 5. 29.>

제40조(어항시설 훼손 등의 비용부담) ① 어항관리청은 어항개발사업이 아닌 다른 공사 또는 어항시설을 손괴·변형시키는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어항시설의 보수·보강 사업을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어항관리청은 제23조제8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그 공공단체로 하여금 해당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은 그 공공단체가 부담한다.<개정 2026. 4. 21.>

[전문개정 2011. 7. 14.]

제41조(사용허가 등의 취소) ① 어항관리청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 또는 점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또는 점용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였을 때
 2. 삭제 <2016. 5. 29.>
 3. 제40조제2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공공단체가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를 하는 경우 이를 게을리하거나 그 비용의 부담을 거부하였을 때
 4. 제46조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5.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6. 제52조에 따른 비상재해 시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허가취소 등으로 발생한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제5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제42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어항관리청은 제38조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자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감면(減免)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체납된 사용료 또는 점용료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10만분의 1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26. 4. 21.>
-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자와 제2항에 따른 연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1.>
- ④ 비지정권자는 제26조제9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2026. 4. 21.>

[전문개정 2011. 7. 14.]

제43조(변상금의 징수) ① 어항관리청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한 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제4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42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6. 4. 21.>

[전문개정 2011. 7. 14.]

제44조(사용료 등의 귀속) ① 어항시설에 대한 사용료·점용료 및 변상금은 해당 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 3. 24.>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시설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제45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시설에 대하여 또는 어항구역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0. 22., 2019. 8. 27., 2020. 3. 24.>

1. 어항시설을 파괴하여 어항의 기능을 해치는 행위
2. 어항시설의 구조를 개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
3. 폐선을 내버려두는 행위
4. 어항구역을 매립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5. 어항구역에 장애물을 내버려두거나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6. 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7. 어항의 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어항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 또는 연구·교습양식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그 밖에 어항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1. 7. 14.]

제46조(원상회복 등) ① 어항관리청은 어항기능의 보전을 위하여 제45조를 위반한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게 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어항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선·장애물·폐기물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45조를 위반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2. 어항의 기능보전을 위하여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제47조(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항 통계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어항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11. 28.>

② 지정권자, 어항관리청 또는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신고·승인·허가·교부·통지 등의 민원사

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7. 11. 28.>

③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1. 28.>

[전문개정 2011. 7. 14.]

[제목개정 2017. 11. 28.]

제4장의2 어촌·어항재생 <신설 2019. 8. 27.>

제47조의2(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어항재생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어촌·어항재생의 기본구상 및 개발방향
2. 어촌·어항재생사업 권역의 선정 현황
3.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연도별 투자 계획
4. 어촌·어항재생사업의 효과 및 전망
5. 어촌·어항재생사업에 대한 평가계획
6. 어촌·어항재생에 관한 관계 부처 간 협업사업 추진계획
7. 그 밖에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추진절차 및 사후관리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9. 8. 27.]

제47조의3(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에 따라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국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등의 이유로 어촌·어항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에 관하여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사업계획수립권자”라 한다)은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제47조의5에 따른 어촌·어항재생지역협의체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해

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계획수립권자는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8. 27.]

제47조의4(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의 설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어촌·어항재생사업 정책의 발굴
2. 어촌·어항재생사업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3.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 수립 등 지원
4. 어촌·어항재생사업 운영·관리 지원
5. 위원회의 운영 지원
6. 제47조의5에 따른 어촌·어항재생지역협의체 운영 등의 지원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7.]

제47조의5(어촌·어항재생지역협의체의 설치) ① 사업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어촌·어항재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어촌·어항재생지역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어촌·어항재생사업의 발굴 지원
2. 어촌·어항재생사업 대상지 주민의 의견수렴
3. 어촌·어항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공동체 운영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7.]

제47조의6(어촌·어항재생사업의 시행) ① 어촌·어항재생사업은 사업계획수립권자가 시행한다. 다만, 어촌·어항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3.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어항재생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라 어촌·어항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8. 27.]

제47조의7(준용규정) 어촌·어항재생사업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은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수립권자”로,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제47조의6제1항에 따라 어촌·어항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어촌종합개발시설”은 “어촌·어항재생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제7조제5항”은 “제47조의3제5항”으로, “제7조제3항”은 “제47조의3제4항”으로 보며, 제10조 중 “시행계획”은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은 “사업계획수립권자의”로 보고, 제10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 중 “제9조제1항 단서”는 “제47조의6제1항 단서”로 본다.

[본조신설 2019. 8. 27.]

제5장 보칙 <개정 2011. 7. 14.>

제48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14.]

제49조(사업비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어촌·어항의 개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 또는 어항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어항개발사업시행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는 어항개발사업은 기본시설의 사업에만 지원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14.]

제49조의2(어촌·어항 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촌주민의 소득 증대, 어촌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의 건전한 정서 함양을 위하여 어촌·어항 고유의 특색을 살린 관광·휴양 자원의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촌·어항의 자연경관·생태·특산물·고유풍속 등의 개발·홍보, 도시민의 어촌문화 체험, 도시·어촌 간 교류촉진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 어촌·어항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14.]

제49조의3(어촌·어항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를 담당하는 관계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어촌·어항 시설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교육·훈련계획의 수립과 교육·훈련과정의 내용 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3. 24.]

제49조의4(바다해설사의 양성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어항 관광 및 해양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촌·어항 및 바다를 관광하는 관광객에게 수산자원, 어구(漁具)를 사용한 어업, 어촌·어항의 역사와 문화 등에 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바다해설사를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바다해설사의 양성과정 및 자격 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50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제47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어항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자, 비지정권자 또는 제25조에 따라 사업을 대행하는 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물의 개축·변경·이전·제거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8. 27., 2020. 3. 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았을 때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였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준공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4. 사업을 계속 시행할 경우 현저히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전문개정 2011. 7. 14.]

제51조(공익을 위한 처분)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폐지,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물의 개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사업지역의 여건이 변하거나 어촌 및 어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로 인하여 시설물이 붕괴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위해(危害)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5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11. 7. 14.]

제52조(비상재해 시의 조치)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어항개발사업시행자, 제47조의6제1항에 따라 어촌·어항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어항관리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재해로 인하여 어촌·어항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어항의 관리에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가옥·선박·토석(土石)·죽목·운반구 또는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7., 2020. 3. 24.>

[전문개정 2011. 7. 14.]

제53조(손실보상 등)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어항개발사업시행자, 제47조의6제1항에 따라 어촌·어항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어항관리청은 제52조에 따른 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어항개발사업시행자, 제47조의6제1항에 따라 어촌·어항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어항관리청이 결정한 금액을 손실을 입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손실을 입은 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등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공탁하고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8. 27.>

③ 제2항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 불복하는 자는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14.]

제54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1조제1항, 제50조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14.]

제55조(권리·의무의 이전) ① 이 법에 따른 승인·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가진 법인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이나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12. 11.>

[전문개정 2011. 7. 14.]

제5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8. 4. 17.>

[전문개정 2011. 7. 14.]

제57조(한국어촌어항공단의 설립) ①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 관련 기술의 개발·연구, 관광 활성화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4. 3. 24., 2018. 4. 17.>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개정 2018. 4. 17.>

③ 공단의 설립과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4. 17.>

④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8. 4. 17.>

[전문개정 2011. 7. 14.]

[제목개정 2018. 4. 17.]

제58조(공단의 사업) ① 공단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 3. 24., 2018. 4. 17., 2020. 12. 22.>

1. 어촌·어항 및 어장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보화
2. 어촌·어항의 개발·관리 및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국제협력
3. 어촌 및 어항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어촌종합개발사업 및 어항개발사업에 수반되는 조사·측량·설계·감리 및 기술에 관한 용역업무 또는 시설물 안전점검·유지·보수 및 준설에 관한 위탁업무
5.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6. 어촌·어항 및 연안수역의 정화·정비·조사와 관련된 사업
7. 어촌·어항과 관련된 도서의 발간·보급 및 홍보
8. 어촌·어항 및 어장과 관련된 관광자원의 개발·관리 및 관광 활성화 사업
9. 어촌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 및 어항시설의 교통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
10. 그 밖에 공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4. 17.>

[전문개정 2011. 7. 14.]

[제목개정 2018. 4. 17.]

제58조의2(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지역본부 및 부설기관 등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 및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내부규약·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8. 4. 17.]

제58조의3(임원)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이사장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 상임·비상임 임원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며,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면과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58조의4(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58조의5(자금의 조달 등) ① 공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 또는 보조금
2. 제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받은 금품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지급·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58조의6(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58조의7(지도·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감독한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공단에 위탁한 업무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3. 각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수립·집행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서류·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 또는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58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어촌어항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58조의9(비밀유지의 의무) 공단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5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6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단의 임직원,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직원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8. 4. 17.>

[전문개정 2011. 7. 14.]

제6장 벌칙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5조제1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5조제2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4. 10. 15., 2018. 4. 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2.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3.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5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제46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또는 제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5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52조에 따른 비상재해 시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58조의9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

[전문개정 2011. 7. 14.]

제6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62조(과태료) ① 제58조의8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 4. 1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8. 4. 17., 2018. 12. 11.>

1.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행계획의 공고 또는 주민열람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제10조제3항 단서 또는 제25조의3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준공 전에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

3.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 없이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한 자

③ 제26조제9항 전단에 따라 정하는 지정권자의 조건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한 자 및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무상 사용·수익 기간을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8. 4. 17., 2018. 12. 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13. 3. 23., 2018. 4. 17.>

[전문개정 2011. 7. 14.]

부칙 <제7571호, 2005. 5.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어항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어항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지정 또는 개발된 어항 및 어항시설은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개발된 어항 및 어항시설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수립되거나 시행된 어항개발계획 또는 어항시설 사업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되거나 시행된 어항개발계획 또는 어항개발사업으로 본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한국어항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항협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협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한국어항협회가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어촌어항협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한국어항협회의 명의를 한국어촌어항협회의 명의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어항협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어촌어항협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어항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2호중 “어항법 제6조제1항”을 “「어촌·어항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②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어항법 제2조제3호”를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③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차목중 “어항법 제2조제3호”를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로 하고, 동조제13호 파목 “어항법”을 “「어촌·어항법」”으로 한다.

④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6호중 “어항법 제25조의2제1항”을 “「어촌·어항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⑤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나목중 “어항법에 의한 제1종 어항 및 제3종 어항”을 “「어촌·어항법」에 따른 국가어항”으로 한다.

⑥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6호중 “어항법”을 “「어촌·어항법」”으로 하고, 제49조제4항제18호중 “어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사업의 허가”를 “「어촌·어항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로 한다.

⑦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어촌·어항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

⑧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어촌·어항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

⑨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나목(13)중 “어항법 제2조제3호 나목”을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 나목”으로 하고, 제2조제6호 나목(14)중 “어항법 제2조제3호 다목의 문화·복지시설”을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 다목의 어항편익시설”로 한다.

⑩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3항 본문중 “어항법”을 “「어촌·어항법」”으로 한다.

⑪해양오염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항만관리청”이라 함은 「항만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청, 「어촌·어항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의 지정권자 또는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관리청을 말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어항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338호, 2007. 4. 6.> (하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1* 생략

1(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10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제30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인가

2) 내지4*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8352호,2007. 4. 11.> (농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4) 생략

4!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0호 중 “ 「농지법」 제36조 ” 를 “ 「농지법」 제34조 ” 로 한다.

4@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8370호,2007. 4. 11.> (수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3! 생략

3@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 「수도법」 제12조 ” 를 “ 「수도법」 제17조 ” 로, “ 동법 제36조 ” 를 “ 같은 법 제52조 ” 로 한다.

3#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8377호,2007. 4. 11.> (수산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1& 생략

1*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호 중 “ 「수산업법」 제69조 ” 를 “ 「수산업법」 제67조 ” 로 한다.

1(내지2\$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8733호, 2007. 12. 2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1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⑬ 부터 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8791호, 2007. 12. 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협회의 정관은 제58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협회의 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협회의 장은 제58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8819호, 2007. 12. 27.> (공유수면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 까지 생략

2)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 부터 4)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820호, 2007. 12. 27.> (공유수면매립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 까지 생략

2)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 실시계획의 인가 ” 를 “ 실시계획의 승인 ” 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 준공인가 ” 를 “ 준공검사 ” 로 한다.

2! 부터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852호,2008. 2. 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 、 <생략> 、 、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71> 까지 생략

<672>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5조 본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및 제3항 본문, 제7조제2항 및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제9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단서, 제1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제17조제3항 및 제5항, 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제21조제2항 본문, 제24조제2항, 제27조제4항, 제34조 후단, 제35조제3항 및 제4항, 제36조제2항, 제47조제1항, 제48조, 제49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제55조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제2항,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59조 및 제62조제3항 중 “ 해양수산부장관 ” 을 각각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으로 하고, 제8조제3호 중 “ 해양수산부장관 ” 을 “ 국토해양부장관 ” 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단서,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단서,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6조제4항 후단,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2항제3호 및 제6항, 제47조제3항 및 제55조제2항 중 “ 해양수산부령 ” 을 각각 “ 농림수산식품부령 ” 으로 한다.

<67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74호,2008. 3. 21.> (건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3\$ 까지 생략

3%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4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10조제5항제3호 중 “「건축법」 제18조제2항”을 “「건축법」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3^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8976호,2008. 3. 21.> (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53>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9276호,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 중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59조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⑪ 부터 ⑮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9401호,2009. 1. 30.> (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국·공유 잡종재산”을 “국유인 일반재산 또는 공유인 잡종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33조 본문”을 “「국유재산법」 제43조 본문”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법」 제44조”를 “「국유재산법」 제55조”로 한다.

<53>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626호, 2009. 4. 22.> (수산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을 “「수산업법」 제76조”로 한다.

⑪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9763호, 2009. 6. 9.> (산림보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 까지 생략

3#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과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유림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승인·동의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국유림의 입목벌채등의 허가

3\$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0124호,2010. 3. 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72호,2010. 4. 1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3^ 까지 생략

3&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10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제22조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동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

3*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10331호,2010. 5. 31.> (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5) 까지 생략

<51>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6호 중 “허가 또는 신고”를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 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52>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0848호, 2011. 7.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32호, 2012. 5. 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03호, 2012. 10.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8>까지 생략

<319>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5조 본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9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제1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17조제3항·제5항, 제1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2항 본문, 제24조제2항, 제27조제4항, 제34조 후단, 제35조제3항·제4항, 제47조제1항, 제48조, 제4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9조의2제1항·제2항,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제55조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제2항,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9조 및 제62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단서,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단서, 제17조제2항·제3항, 제18조제3항, 제26조제4항 후단, 제36조, 제37조제2항, 제38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47조제3항 및 제55조제2항 중 “농림수산물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32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248호, 2014. 1. 14.> (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73>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543호, 2014.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어항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등의 준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립하거나 변경되는 어항개발계획에 따라 어항시설을 설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토지등의 수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립하거나 변경되는 어항개발계획에 따라 어항의 육역에 관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비지정권자의 어항시설 사용 또는 점용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비지정권자가 제26조제4항에 따라 토지 및 시설의 사용 또는 수익을 지정권자에게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토지의 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정권자가 시행한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인 토지의 매각에 대해서는 제27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827호,2014. 10. 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83호,2015. 6. 2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어촌”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제27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54>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3385호,2015. 6. 2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나목10) 중 “종묘생산시설(種苗生産施設)”을 “수산종자생산시설”로, “종묘 배양장”을 “수산종자 배양장”으로 한다.

⑬ 생략

부칙 <제14244호,2016. 5.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4항 및 제49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33호,2017. 11. 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05호,2018. 4.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어촌어항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어촌어항협회가 행한 행위와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어촌어항공단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한국어촌어항협회의 명의를 한국어촌어항공단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한국어촌어항공단 설립과 동시에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이를 포괄하여 승계한다. 이 경우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임직원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임직원으로 선임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어촌어항협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어촌어항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한국어촌어항협회”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15917호, 2018. 12.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3, 제34조, 제38조제8항(사용 또는 점용의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6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준공 전 사용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4항·제5항, 제26조제5항·제6항, 제38조제2항·제3항 및 제55조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준공 전 사용신고, 귀속어항시설 등의 무상사용·수익신고, 어항시설 사용·점용신고 또는 지위 승계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어항개발사업의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8항(사용 또는 점용의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어항관리청이 사용·점용허가나 사용·점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284호, 2019. 1. 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68호, 2019. 8. 27.> (양식산업발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까지 생략

4)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 「수산업법」 ”을 “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으로, “ 어업권 ”을 “ 어업권·양식업권 ”으로 한다.

제45조제7호 중 “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교습어업 ”을 “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 또는 연구·교습양식업 ”으로 한다.

4! 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6570호, 2019. 8.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어촌·어항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부칙 <제17007호, 2020. 2. 18.>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7107호, 2020. 3. 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71호, 2020. 3. 31.> (전기안전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 까지 생략

3%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7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3^ 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부칙 <제17749호, 2020. 12.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93호, 2021. 1. 12.> (지방자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 까지 생략

4! 법률 제17007호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4@ 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부칙 <제21447호, 2026. 3. 5.> (지방자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 까지 생략

2!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2@ 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21571호, 2026. 4.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의2, 제17조제1항·제2항·제6항·제7항, 제18조제1항, 제27조제2항, 제35조제1항·제3항, 제42조제5항, 제45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제46조의2, 제60조제2항제4호, 제62조제2항·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제6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5항, 제23조제1항·제5항·제6항,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어항개발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연체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를 고지하는 사용료 또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4조제3항 본문 중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1항 단서”를 “같은 조 제8항, 제26조제1항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62조제4항”을 “제62조제5항”으로 한다.



어촌·어항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4호, 2026. 6. 23.,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051 - 773 - 5651, 5652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과) 051 - 773 - 6048, 61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촌·어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29.>

제2조(주민편익시설의 범위) 「어촌·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다목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편익시설”이란 여객선·생활필수품운반선·도선 등 선박의 계류시설과 대기실 등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9. 24., 2021. 1. 5.>

제2장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제3조(기초조사·정밀조사의 내용 등)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8. 10. 2., 2021. 6. 8.>

1. 어촌의 분포 및 인구변동의 추이에 관한 사항
2. 어업 등 산업별 배치 및 생산·종사자 등에 관한 사항
3. 연안어업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
4. 연안해면의 이용현황에 관한 사항
5.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수요 등에 관한 사항
6. 상하수도·도로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7. 의료시설·교육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에 관한 사항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등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9. 관광자원에 관한 사항
10. 도서지역의 여객선 통항 등 어촌의 교통여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 10. 2.>

1. 어항구역 중 수역의 수심 및 해저의 지질 등에 관한 사항
2. 어항구역 및 어항구역 부근의 조석 및 해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제4호에 따른 연안해면과 관련한 기초조사의 범위는 최저 간조시의 수심이 10미터 (강원특별자치도·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15미터) 이내인 해면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의 개선·확충사업과 관련한 기초조사의 범위에 있어서는 영해까지로 할 수 있다.<개정 2008. 10. 29., 2024. 6. 4.>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는 어촌·어항에 대한 측량, 시료채취, 항공기·측량선·수중촬영장비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 등 직접조사와 문헌조사 등 간접조사의 방법에 의한다.<개정 2018. 10. 2.>

⑤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해당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결과를 해양수산부 및 법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 (이하 “한국어촌어항공단”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10. 2.>

1. 조사의 주체 및 기간

2.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의 결과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조사대상 지역의 출입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10. 2.>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고시)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2. 25.>

1. 어촌·어항 발전을 위한 중장기 개발·투자계획의 주요내용 및 그 변경내용
2.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계획(이하 “어촌종합개발계획”이라 한다),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이하 “어항개발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47조의2에 따른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의 주요내용 및 그 변경내용
3.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장 어촌종합개발

제5조(어촌종합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변경)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0. 2.>

1. 법 제6조제2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역별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총투자금액을 100분의 10미만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제6조(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역별 어촌종합개발사업 계획(이하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수립의 배경·목적, 계획의 범위 등 사업계획의 개요
2. 해당 권역의 위치 및 행정구역, 권역의 특성, 자연환경, 수산업 등 관련 산업현황, 교통 및 생활환경 등 일반현황
3. 계획의 기본구상 및 부문별 세부개발계획
4. 투자방향, 투자우선순위 평가 및 소요사업비 등 투자계획
5. 개발효과 및 전망

제7조(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수립·변경의 고시)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권역의 명칭 및 위치
2.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
3. 부문별 시설의 설치계획 및 그 변경계획의 내용
4. 그 밖에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자)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시행지역 안에 있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 10. 31., 2010. 4. 20., 2018. 10. 2., 2020. 8. 26., 2023. 1. 10.>

1. 토지 소유자
2. 「수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

제9조(시행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3. 사업시행자·사업시행기간 등 사업의 개요
4. 주요시설 및 사업비 명세
5. 사업비 조달계획
6. 사업효과
7. 설치되는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8. 세부설계도서

제10조(경미한 사항의 시행계획변경에 따른 신고) 법 제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10. 2.>

1. 사업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설치되는 시설의 규모 또는 사업비를 100분의 10미만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수산업생산기반시설 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보수·개량사업을 변경하는 경우

제11조(시행계획의 공고 등) 법 제9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이하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제9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해당 사업의 지역주민이 2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준공확인의 특례)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감리 등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해당 사업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준공보고서에 첨부하여 법 제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기관에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12. 13., 2014. 5. 22., 2018. 10. 2., 2019. 6. 4., 2020. 1. 7., 2021. 9. 14.>

제13조(준공전 사용허가 등) ①법 제1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준공확인을 받기 전에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나 시설(이하 “어촌종합개발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준공전 사용의 신고를 하거나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47조의7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불구하고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2. 25.>

1. 준공전 사용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 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을 준공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 법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을 준공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전 사용의 신고 및 허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4조(조사·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대상자)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10. 29., 2009. 6. 26., 2011. 1. 17., 2018. 10. 2.>

1. 한국어촌어항공단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제15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기부 등) ①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 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어촌종합개발사업 종료후 국·공유지무상양여신청서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6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승인) ①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시설을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다른 자에게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해당 사업의 승인기관(법 제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사업승인기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외 사용자의 주소 또는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2. 목적 외 사용의 대상이 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설
3. 목적 외 사용의 기간·내용 및 방법
4. 목적 외 사용의 이유
5.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의 회계내역

②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 가. 공용·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 10년
 - 나. 그 밖의 경우 : 3년
2.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가. 공용·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 3년
 - 나. 그 밖의 경우 : 1년

제4장 어항 개발

제1절 어항의 지정 및 어항개발계획

제17조(어항지정 등의 고시) 법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 또는 어항구역 밖 어항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항의 명칭·종류·위치 및 구역
2. 그 밖에 어항지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 등) 해양수산부장관, 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구역 안에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명칭·위치·구역·용도 및 배치계획 등을 정하여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기본계획에 미리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31., 2008. 2. 29., 2013. 3. 23., 2026. 6. 23.>

제19조(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의 범위) 법 제18조제2항에서 “해양관광·레저용 선박의 계류시설이나 관광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10. 2.>

1. 유람선(모터보트를 포함한다)·낚시어선·요트 및 윈드서핑 등 해양관광·레저용 선박 등의 계류시설 및 그 보조시설
2. 바다낚시시설 및 그 부대시설
3. 어촌관광 안내소, 주차장 등 관광객 편의시설
4. 지역특산물 판매장, 횃집 등 어촌소득증대 또는 관광객이용을 위한 시설
5. 숙박시설·목욕시설·오락시설 등 관광객을 위한 휴게시설
6. 그 밖에 어촌관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20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이 법 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1. 5.>

1. 어항시설의 현황
2. 어항의 이용현황 및 어업의 현황
3. 조위(조수에 의한 해수면의 높이를 말한다)·파고(波高) 등 자연적 조건
4. 인접지역의 관련 산업 및 관광자원의 현황과 전망
5. 그 밖에 어항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이에 수반되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2조제5호 가목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미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육상 구조물의 변형·균열 및 침하상태
2. 수중 구조물의 변형·균열 및 침하상태
3. 그 밖에 어항개발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어항시설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4. 22.>

1. 어항시설의 종류 및 규모
2. 어항시설의 배치계획
3. 기본시설별 표준단면
4. 어촌관광구역의 설정 및 시설 배치계획
5. 어항시설의 투자계획 및 효과

④법 제1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어항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계획의 필요성
2. 정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3. 정비를 필요로 하는 어항시설의 배치계획
4. 정비를 필요로 하는 기본시설의 표준단면
5. 정비에 수반되는 어항 안에 매몰된 토사의 준설계획
6. 정비를 필요로 하는 어항시설의 투자계획 및 효과

⑤법 제1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어항환경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항정화 및 환경개선의 필요성
2. 어항정화 및 환경개선시설의 종류 및 규모
3. 어항정화 및 환경개선시설의 배치계획
4. 정화 및 개선을 필요로 하는 어항정화시설 및 환경개선시설의 표준단면도
5. 어항정화 및 환경개선시설에 대한 투자계획 및 효과
6. 어항정화를 위한 어항청소선 운영계획

⑥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른 레저관광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3. 4. 22.>

1. 레저관광개발의 필요성
2. 법 제2조제5호다목4)에 따른 레저용 기반시설(이하 이 항에서 “레저용 기반시설”이라 한다)의 종류 및 규모
3. 레저용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4. 레저용 기반시설의 표준단면도
5. 레저용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계획 및 효과

⑦ 법 제1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교통편익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21. 6. 8.>

1. 교통편익 증진의 필요성
2. 교통시설의 종류 및 규모
3. 교통시설의 연계 및 배치계획
4.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계획 및 효과

⑧지정권자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어항여건의 구체적인 변경내용, 변경이 필요한 어항시설의 종류 및 규모, 소요사업비 등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3. 4. 22., 2021. 6. 8.>

제21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고시)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항의 명칭·종류·위치 및 구역
2. 어항개발계획의 주요 내용 또는 주요 변경내용
3. 그 밖에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와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10. 29., 2018. 10. 2.>

1. 외곽시설[호안(護岸)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미만의 증감
- 1의2. 외곽시설 중 호안의 변경
2. 매립면적의 1천 제곱미터 이하의 증감
3. 지형사정 또는 어항여건의 변경으로 인한 어항시설의 위치 변경
4. 기본시설 구조물 단면의 변경
5. 어항관광을 위한 구역 설정의 변경
6.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제23조(어항개발계획 수립 등의 협의) ①지정권자가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어항이 소재하고 있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31., 2018. 10. 2.>

1. 의견을 듣고자 하는 목적
2. 당해 어항개발계획의 개요
3. 그 밖에 어항개발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이해관계인 및 해당 어항소재지에 있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8. 1. 31., 2018. 10. 2.>

③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들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31., 2018. 10. 2.>

1.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 및 직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제출된 의견의 내용

④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개정 2018. 10. 2.>

제2절 어항개발사업

제24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등) ①법 제2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2. 어항명 및 공사의 종류
3. 공사의 목적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공사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
2.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그 산출내역
3. 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조달계획(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4.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또는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지적평면도 및 인접지역을 포함한 계획평면도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신청과 관련하여 2이상의 경합이 있는 경우 사업수행능력·자금조달능력 및 어항개발 공헌도 등 사업시행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사업시행자가 선정될 수 있는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삭제<2008. 1. 31.>

제25조(어항개발사업시행을 위한 협의)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정권자와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명 및 사업시행자
2. 시설의 장소·규모 및 구조
3. 시설배치계획도·평면도 및 단면도
4. 총사업비 내역서 및 사업비 확보계획서

제26조(귀속대상이 아닌 어항시설) 법 제23조제4항 단서에서 “여객승강용시설, 어항정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9. 24., 2014. 12. 9.>

1. 법 제2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지정권자”라 한다)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어항시설
2. 지정권자 소유의 토지 또는 법 제2조제5호가목3)의 수역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부잔교, 하역기계, 급유·급수시설, 전기설비

나. 여객승강용 시설

다. 얼음공급을 위한 송빙교(送氷橋) 및 쇄빙탑 시설

라. 어항정화시설

마. 어선 건조·수리장의 시설 중 선박의 인양·운반을 위한 시설

바. 제27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단체가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다음의 시설

(1) 기자재창고·수산물위판장·활어일시보관시설 및 어업용통신시설

(2) 복지회관·체육시설·전시관 및 공연장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에 설치하는 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어항편익시설

제27조(우선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단체) 법 제2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2. 5. 22., 2014. 9. 24., 2015. 12. 22., 2018. 10. 2.>

1.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

2. 한국어촌어항공단

3.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전업수산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수산업경영인의 연합단체

제27조의2(기술 기준 적용 대상 어항시설)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항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5호나목1)에 따른 수송시설

2. 법 제2조제5호나목2)에 따른 항행보조시설 중 항로 표시

3. 법 제2조제5호나목9)에 따른 어항정화시설

4. 법 제2조제5호라목 중 부지

[본조신설 2014. 9. 24.]

제27조의3(준공확인の特례) 법 제25조의3제1항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감리 등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비지정권자 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와 협의를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어항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해당 사업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법 제2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준공보고서에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 7., 2021. 9. 14.>

[본조신설 2019. 6. 4.]

제27조의4(준공 전 사용허가 등) ① 법 제2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비지정권자 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와 협의를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확인

을 받기 전에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거나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제26조 각 호의 어항시설을 준공 전에 사용하려는 경우
2.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제1호 외의 시설 또는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준공 전에 사용하려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의 신고 및 허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6. 4.]

제28조(비지정권자의 소유권취득 대상 부지)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 부지”란 다음 각 호의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18. 10. 2.>

1. 어선 건조·수리장 및 기자재창고용 부지
2. 급수(給水)·급빙(給氷)·급유(給油) 시설용지 및 선용품보급창고용 부지
3. 수산물시장·수산물직매장·수산물집하장 및 활어일시보관시설용 부지
4. 제빙·냉동·냉장시설 및 수산물가공공장용 부지

제29조(귀속된 토지의 매각) 지정권자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속된 토지를 비지정권자에게 우선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당해 토지의 용도와 어항개발사업을 위한 허가신청의 기한 등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30조(귀속된 어항시설 등의 무상사용·수익기간 등) 비지정권자가 법 제26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기간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총사업비 중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의 가액을 뺀 금액을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의 연간사용료로 나눈 숫자의 햇수로 한다. 이 경우 비지정권자가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을 법 제2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준공전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때에는 그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사업비에서 뺀다. <개정 2019. 6. 4.>

제31조(총사업비 및 토지가액의 산정방법) ① 법 제26조제8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해당 어항개발사업의 준공확인의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어항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24., 2011. 1. 17., 2013. 3. 23., 2013. 6. 28., 2014. 9. 24., 2019. 6. 4., 2020. 8. 26.>

1. 조사비 :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그 밖의 어항의 설계를 위한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2. 설계비 :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기준에 의한다.

3. 순공사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4. 보상비 :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된 토지매입비(건물·입목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이주대책비, 어항구역안의 시설을 이전할 경우 그 이전비 및 영업권·어업권·양식업권·광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를 말한다.
5. 부대비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비, 시공감리비 및 공사손해보험료 등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조건의 이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6. 건설이자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대한 건설이자(이자율은 수신고를 기준으로 한 상위 6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항개발사업 공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건설이자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 가. 비지정권자가 고의로 공사를 지연시킨 경우
 - 나. 비지정권자의 중대한 과실로 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에서 정한 시기까지 어항개발사업의 준공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 다.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등 비지정권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부가가치세 : 법 제2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토지 및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7조에 따라 납부하는 세액을 말한다.
- ②법 제26조제8항에 따른 토지가액의 산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6. 8. 31., 2019. 6. 4., 2022. 1. 21.>

제32조 삭제 <2008. 1. 31.>

제33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또는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중 “항만시설관리권”은 “어항시설관리운영권”으로,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부, 통합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로,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권자”로,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는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등록원부”로 본다. <개정 2008. 1. 31., 2008. 2. 29., 2013. 3. 23., 2026. 6. 23.>

제34조 삭제 <2019. 6. 4.>

제3절 어항시설의 관리 및 사용

제35조(어항시설의 사용·점용 허가) 법 제35조에 따른 어항관리청(이하 “어항관리청”이라 한다)이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9., 2019. 6. 4.>

1. 다음 각 목의 일반기준에 적합할 것

가. 어항개발계획에 부합할 것

나. 어항 고유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2. 시설물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그 시설물의 이동·이설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철근콘크리트 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등 영구구조물이 아닐 것

나. 존치기간이 5년 이내일 것. 다만, 어항개발사업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항개발사업의 종료일 이내에 말한다.

다. 3층 이하일 것

라.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3. 어항시설이 기능시설 및 어항편익시설의 건축물(지정권자가 직접 시설한 건축물 또는 제30조에 따른 무상사용·수익기간이 만료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귀속 건축물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건축설비와 주요구조부의 변형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대통령령 제21096호(2008. 10. 29.)에서 제35조제3호를 이미 개정함.]

제36조(어항시설의 보수 등의 범위) 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어항시설의 보수·보강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는 어항시설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완전한 보수 및 보강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총액을 말한다.

제37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항시설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8. 10. 2., 2019. 6. 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가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군사상의 필요로 사용하는 경우

4. 폐선·폐유처리 등 어항 및 어장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5.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시행하는 어항개발사업의 위탁을 받은 자 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어항개발사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대상인 어항개발사업에 한한다)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6. 법 제38조제4항제3호에 따라 해양수산 관련 단체 소유의 선박이 사용하는 경우

7. 한국어촌어항공단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항시설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9. 24., 2014. 12. 9., 2019. 6. 4.>

1. 어항구역 안에서 수산물 등의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법 제2조제5호다목7)에 따른 주민편익시설로서 국가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의 여객편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어항편익시설을 어촌관광을 위하여 설정한 구역 내에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38조(변상금의 징수) ①어항관리청은 법 제4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어항관리청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안에 변상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어항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어항시설의 관리비용) ①어항관리청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사용료·점용료 및 변상금 수입금의 100분의 80이상은 어항시설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어항에서 징수한 수입금은 국가어항의 시설관리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관리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선·장애물·폐기물의 제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어항구역 안의 환경정화에 소요되는 비용
3. 어항의 기능제고와 안전 및 이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4. 그 밖에 어항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비용

제40조(금지행위) 법 제45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 4. 22., 2020. 8. 26., 2023. 1. 10.>

1. 정당한 권한없이 토석·자갈·모래 등을 채취하는 행위
2.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하여 어구 등을 설치하는 행위(어항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산업법」 제46조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교습어업이나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 또는 연구양식업·교습양식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어항의 환경 및 이용질서 유지를 위한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제41조(장애물 등의 제거조치 등) ①어항관리청은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선·장애물·폐기물의 제거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제거 등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명칭 및 내용
2. 제거 등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위치
3. 제거 등의 조치예정일시

②어항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물건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건의 가액이 공매비용에 미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공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매할 물건의 명칭 및 내용
2. 공매의 장소 및 일시
3. 입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

④어항관리청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액에서 당해 물건의 제거 등 조치와 공매에 소요된 비용을 뺀 후 잔여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제42조(표준화된 서식과 전자문서의 이용) ①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어항통합정보시스템에서 이용 가능한 표준화된 서식 및 컴퓨터 상호 간에 전자적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표준전자문서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8.>

② 삭제 <2013. 3. 23.>

제4장의2 어촌·어항재생 <신설 2020. 2. 25.>

제42조의2(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47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의 연도별 투자 계획(이하 “연도별 투자 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총투자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47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관계 부처 간 협업사업 추진계획의 내용이 변경되어 그 변경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3. 법 제47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 연도별 투자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2. 25.]

제42조의3(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이하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촌·어항재생사업의 목적, 배경 및 기본 추진방향 등 사업개요
2. 어촌·어항재생사업 대상지의 위치, 자연환경, 수산업 등 관련 산업현황, 교통 및 생활여건 등 지역 현황
3. 어촌·어항재생사업의 부문별 세부개발계획
4.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총사업비 및 투자 우선순위의 평가에 관한 사항 등 투자계획
5. 어촌·어항재생사업의 효과 및 전망

[본조신설 2020. 2. 25.]

제42조의4(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47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42조의3제4호에 따른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2.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설치하려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2. 25.]

제42조의5(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변경 고시) 법 제47조의3제5항에 따른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촌·어항재생사업 대상지의 명칭 및 위치
2. 사업기간 및 규모
3. 부문별 세부개발계획에 따른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계획
4. 그 밖에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2. 25.]

제42조의6(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의 지정 등) ① 법 제4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 1. 19.>

1.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정부출연연구기관
 - 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나. 국토연구원
 - 다. 건축공간연구원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②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전년도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25.]

제42조의7(어촌·어항재생지역협의체의 구성 등) ① 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어촌·어항재생지역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2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공동위원장은 어촌·어항재생사업 대상지의 주민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을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수립권자”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구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사업계획수립권자가 협의체를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어촌·어항재생사업 대상지의 주민
2. 어촌·어항재생사업을 담당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어촌·어항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 협의체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 간 협의를 통해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25.]

제42조의8(어촌·어항재생사업의 시행자) 법 제47조의6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어촌·어항재생사업의 대상지에서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1. 19., 2022. 10. 4.>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3의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촌특화지원센터
6.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본조신설 2020. 2. 25.]

제5장 보칙

제43조(재결의 신청) ① 법 제53조제3항(법 제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재결의 신청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이나 공사시행 등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이나 공사시행 등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각각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손실발생의 사실
3.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신청자가 산출한 손실액의 내역
4. 협의의 경과

제4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국가어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4. 9. 24., 2015. 1. 6., 2019. 6. 4.>

1.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의 변경 중 외곽시설계획[호안(護岸)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변경
 2.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의 변경 고시(외곽시설계획의 변경 고시는 제외한다)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시행
 4.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허가 및 협의
 5. 법 제25조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시행하는 어항개발사업의 대행
 - 5의2. 법 제2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준공확인 및 준공확인증명서의 발급
 - 5의3. 법 제2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른 준공 전 사용의 허가 또는 준공 전 사용의 신고수리
 6.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귀속 토지의 매각
 7.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귀속 토지 및 시설의 무상사용·수익에 관한 조치
 8. 법 제27조에 따른 토지의 매각 및 어항시설의 양여
 9. 법 제29조에 따른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설정
 10. 법 제31조에 따른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11. 삭제 <2019. 6. 4.>
 12. 삭제 <2019. 6. 4.>
 13. 법 제50조에 따른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14. 법 제51조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
 15. 법 제52조에 따른 비상재해시의 조치
 16. 법 제53조에 따른 손실보상의 조치
 17. 법 제54조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8. 법 제55조에 따른 권리·의무의 이전신고의 수리
 19. 법 제62조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14. 9. 24., 2018. 5. 28., 2018. 10. 2.>

1.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조사 또는 정밀조사
 2. 법 제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른 조사·측량·설계 및 공사감리
 3.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어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4.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가어항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국가어항 기본시설의 안전점검
 5.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어항환경개선계획 시행을 위한 어항관리선의 운영
 6.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중 어항시설의 보수 공사 및 1만 세제곱미터 미만의 어항유지준설
 7.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어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 7의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8. 법 제49조의2에 따른 어촌·어항 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
 9. 법 제49조의4에 따른 바다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
- [전문개정 2008. 10. 29.]

제44조의2(설립등기) ①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역본부 등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본조신설 2018. 10. 2.]

제44조의3(정부의 출연금 지급 등) ① 정부가 법 제58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한국어촌어항공단에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미리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한국어촌어항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출연금을 받으려면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부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출된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제4항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0. 2.]

제44조의4(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신청) ①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법 제58조의6 전단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법 제58조의6 후단에 따라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증명하는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산총칙
2. 추정재무상태표
3. 추정손익계산서
4. 자금계획서

[본조신설 2018. 10. 2.]

제45조 삭제 <2018. 10. 2.>

제45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승인절차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3. 3.]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 4. 4., 2018. 10. 2.>

[전문개정 2008. 10. 29.]

부칙 <제19162호, 2005. 12.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어항법 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과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9호중 “어항법”을 “「어촌·어항법」”으로 한다.

②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의 기관·단체란의 제15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5. 한국어촌어항협회

③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어촌·어항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협회

④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어항법 제2조제2호”를 “「어촌·어항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8호중 “어항법 제2조제3호 가목 및 라목”을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 가목 및 다목”으로 한다.

⑥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른 지방어항 및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⑦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국가어항

⑧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어촌·어항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협의
제52조제7항중 “어항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협회”를 “「어촌·어항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협회”로 한다.

⑨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라목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의 (1)중 “어항법 제2조제3호”를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로, 같은 (1)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지정권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어촌·어항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 |
| 따른 어항개발계획의 확정전, 비지정권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 |
| 제2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허가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 |
|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완료전)" | |

⑩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마목의 행정계획의 종류란중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어촌·어항법」 제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어항기본계획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어항법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351호, 2007. 10. 31.> (수산업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1* 까지 생략

1(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 동법 제4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 ” 을 “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 로 한다.

2) 부터2&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0506호, 2007. 12. 31.> (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89호, 2008. 1.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77호, 2008. 2. 29.> (농림수산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4% 까지 생략

4^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해양수산물부 ” 를 “ 농림수산물식품부 ” 로 한다.

제33조 후단 중 “ ” 해양수산물부 “ 는 ” 해양수산물부, 광역시·도·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 “ 로, ” 해양수산물부장관 “ 은 ” 지정권자 “ ” 를 “ ” 국토해양부 “ 는 ” 농림수산물식품부, 광역시·도·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 “ 로, ” 국토해양부장관 “ 은 ” 지정권자 “ ” 로 한다.

제44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전단, 제15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19조제6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37조제2항제3호,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3호 및 제46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호,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24조제2항제1호, 제31조제1항제6호 단서, 제39조제2항제4호 및 제46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4&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 <제21096호, 2008. 10.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98호, 2008. 10. 29.> (건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1^ 까지 생략

1&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호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설비와 주요 구조물”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와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로 한다.

1* 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21185호, 2008. 12. 2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5호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⑫ 부터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565호, 2009. 6. 2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 、 、 <생략> 、 、 、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2& 까지 생략

2*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

2(부터4*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1698호, 2009. 8. 21.>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 “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관련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를 “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관련 전문위원회 ”로 한다.

⑨ 부터1(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2127호, 2010. 4. 20.> (수산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를 “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로 한다.

1& 부터2#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2525호,2010. 12. 1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 을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 으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22626호,2011. 1. 1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1(까지 생략

2)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 ” 을 각각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 로 한다.

2! 부터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823호,2011. 4.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3718호,2012. 4.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4& 까지 생략

4*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4(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3795호, 2012. 5. 2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호 중 “어업인후계자를”을 “후계어업경영인을”로 한다.

부칙 <제24455호, 2013. 3. 2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5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19조제6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37조제2항제3호,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0조제3호,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24조제2항제1호, 제31조제1항제6호 단서 및 제39조제2항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3조 후단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9>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제24466호, 2013. 3. 23.>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을 삭제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24515호,2013. 4. 22.>

이 영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638호,2013. 6. 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7호 중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 ”을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로 한다.

2@ 부터3& 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25358호,2014. 5. 2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책임 감리대상으로서 당해 사업의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 ”를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으로서 해당 사업의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로 한다.

2^ 부터3&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25636호,2014. 9. 24.>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40호, 2014. 12. 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985호, 2015. 1. 6.>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 까지 생략

2[&]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업관리단장(어항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2* 부터 3)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6754호, 2015. 12. 2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 까지 생략

3\$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전업어업인”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전업수산인”으로 한다.

3% 부터 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472호, 2016. 8. 3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부동산가액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5> 부터 <92>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751호, 2016. 12. 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8916호, 2018. 5. 28.>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13호, 2018. 10.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어촌어항협회”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한다.

②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한국어촌어항협회”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한다.

③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5호 중 “한국어촌어항협회”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29808호, 2019. 6. 4.>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37호, 2020. 1. 7.>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27조의3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⑩부터 1^ 까지 생략

부칙 <제30490호, 2020. 2. 25.>

이 영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09호, 2020. 3. 3.>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77호, 2020. 8. 26.>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 까지 생략

2[&]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

제31조제1항제4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양식업권”으로 한다.

제40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교습어업”을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교습어업이나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 또는 연구양식업·교습양식업”으로 한다.

2* 부터 3[&]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1380호, 2021. 1. 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408호, 2021. 1.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57호, 2021. 6. 8.>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86호,2021. 9. 1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27조의3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1& 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32352호,2022. 1. 2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4^ 까지 생략

4&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4* 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32943호,2022. 10.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25호,2023. 1. 10.> (수산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3! 까지 생략

3@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40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45조”를 “「수산업법」 제46조”로 한다.

3# 부터4*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33434호,2023. 4. 25.>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4550호, 2024. 6. 4.>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 까지 생략

2!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2@ 부터 4\$ 까지 생략

부칙 <제36424호, 2026. 6. 2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 까지 생략

2^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33조 후단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광역시”로 한다.

2& 부터 3\$ 까지 생략

■ 어촌·어항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3. 4. 2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위반행위자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

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행계획의 공고 또는 주민열람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2조제2항 제1호 | 100 | 150 | 200 |
| 나. 법 제10조제3항 단서 또는 제25조의3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준공 전에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경우 | 법 제62조제2항 제2호 | 100 | 150 | 200 |
| 다. 법 제26조제9항 전단에 따라 정하는 지정권자의 조건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무상사용·수익기간을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 법 제62조제3항 | 50 | 75 | 100 |
| 라.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 없이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한 경우 | 법 제62조제2항 제3호 | 100 | 150 | 200 |
| 마. 법 제58조의8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62조제1항 | 250 | 375 | 500 |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시행 2025. 3. 11.] [해양수산부령 제726호, 2025. 3. 11.,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051 - 773 - 5651, 5652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과) 051 - 773 - 6048, 61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촌·어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29.>

제2장 어촌종합개발

제2조(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어촌·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4., 2018. 10. 18.>

1. 사업비 또는 사업규모가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변경되는 경우
2. 사업시행기간이 변경되거나 시설물의 위치·단면이 변경되는 경우
3. 법 제2조제2호 나목과 관련되는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역별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이하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이 변경되는 경우
4. 단순 착오 등으로 인하여 사업내용의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

제3조(경미한 사항의 시행계획변경에 따른 신고) 「어촌·어항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0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보수·개량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토지 또는 어업권·양식업권의 보상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4., 2020. 8. 28.>

1. 해안도로·선착장·제방·방파제·방사제(防砂堤) 등 연안시설의 보수·개량사업
2. 해중 또는 해상에 설치된 고정시설물의 보수·개량사업
3. 법 제2조제2호 나목의 사업과 관련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어촌환경시설의 보수·개량사업

제4조(준공보고서 및 준공확인증명서)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준공보고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9., 2014. 9. 25., 2019. 6. 7.>

1. 준공조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준공검사조서(영 제12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준공시설의 현황측량도(축척 1천200분의 1)
3.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과 대비표(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총사업비 명세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시설물 또는 토지의 사업비에 한정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개정 2008. 10. 29., 2014. 9. 25.>

[제목개정 2014. 9. 25.]

제5조(준공 전 사용허가 등) 법 제10조제3항 단서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이하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거나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서류를 사업승인기관(법 제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사업승인기관을 말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 가. 준공 전 사용대상시설의 사진 1부
 - 나. 준공 전 사용계획서 1부
2.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 가.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 나.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1부
 - 다.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

[전문개정 2019. 6. 7.]

제6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기부신청서 등) 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의 기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어촌종합개발시설 기부조서
2. 어촌종합개발시설 무상편입도(축척 1천분의 1) 또는 그 확정도(부지조성의 경우에는 축척 1천분의 1, 시설물 설치의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

③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공유지 무상양여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④제3항에 따른 국·공유지 무상양여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0. 22.>

1. 별지 제8호서식의 국·공유지 무상양여지조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3. 국·공유지 무상양여도 또는 신규대조도(축척 1천 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4. 삭제<2007. 8. 16.>

5. 삭제<2015. 10. 22.>

⑤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07. 8. 16., 2011. 2. 9., 2015. 10. 22.>

⑥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조성하여 기부한 시설 또는 토지를 기부받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국·공유지 인수증서에 무상편입도 또는 그 확정도를 첨부하여 기부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등기소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16., 2008. 3. 3., 2013. 3. 24.>

⑦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에게 국·공유지를 무상양여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국·공유지 무상양여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등기소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16., 2008. 3. 3., 2013. 3. 24.>

제7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보호 및 관리) ①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시설에 대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어촌종합개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이하 “시설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8.>

②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설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18.>

③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법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한국어촌어항공단”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 10. 18.>

④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설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 및 보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18.>

⑤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어촌종합개발시설이 설치된 구역안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2. 어촌종합개발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나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표지의 설치

⑥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어촌종합개발시설의 효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설치의 제한 또는 금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관리계획의 수립,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점검·정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 3. 3., 2013. 3.

24., 2018. 10. 18.>

제8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20. 2. 26.>

②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3., 2013. 3. 24., 2014. 9. 25., 2018. 10. 18., 2020. 2. 26.>

1. 어촌종합개발시설이 건축물인 경우로서 해당 시설면적의 100분의 10 이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2. 당초 승인된 목적 외의 사용의 사유 및 규모 등의 변경없이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제9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폐지)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시설의 폐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어촌종합개발시설 폐지승인신청서에 폐지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4.>

제3장 어항개발

제10조(어항지정의 절차 및 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어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어항지정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어항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어항(이하 “지정대상어항”이라 한다) 및 그 인근어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08. 10. 29., 2013. 3. 24.>

1. 어항시설의 현황 및 이용실태
2. 어선의 안전수용률(기상악화시 해당 어항이 어선을 안전하게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3. 해당 어항 및 인근어항의 수산업 현황 및 관광 현황
4. 어항 지정시의 경제성 분석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이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 3. 3., 2013. 3. 24., 2014. 9. 25.>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범위가 전국적이거나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경우로써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또는 그 밖의 항·포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또는 그 밖의 항·포구를 국가어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4. 9. 25.>

1. 자연적·사회적·경제적 입지조건을 갖춘 어업근거지인 경우

2. 해상교통·관광·유통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④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방어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3., 2012. 10. 25., 2013. 3. 24., 2014. 9. 25.>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전 조사결과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지정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2. 어항 지정의 필요성 및 추진경위
3. 중장기 개발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4. 어항지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5. 어항지정시 경제성 및 효과성 분석
6. 지정대상어항의 위치도 및 지적도면

제11조(어항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 등) 법 제17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어항이 제10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어항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제적·사회적·물리적 여건 변화 등으로 지정 내용의 변경 또는 지정의 해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가. 국가어항에 대하여 해당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 내용의 변경 또는 지정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 나. 지방어항에 대하여 해당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지정 내용의 변경 또는 지정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본조신설 2016. 12. 1.]

제12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절차 및 신청서 등) ①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지정권자는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하기 전에 해당 어항을 관리 또는 이용하는 영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단체의 투자계획 중복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검토하여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고 사업수행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4. 9. 25.>

1. 신청서의 구비서류
2. 배후부지의 이용계획 등 어항개발계획과의 부합여부
3. 어항시설사업의 우선순위 및 사업비 조달계획의 적정성 여부
4. 사업시행에 따른 장애요인 여부 및 그 해소대책 등 대안의 적정성 여부

5. 해당 사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융자사업인 경우에는 지원계획과의 부합여부

③지정권자는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을 허가한 때에는 그 허가신청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영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도서를 말한다.<개정 2008. 3. 3., 2013. 3. 24.>

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2. 사용 또는 점용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
3.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에 한한다)
4. 평면도·정면도 및 측면도(건축 또는 기계·설비인 경우에 한한다)

제12조의2(안전점검의 대상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어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의 대상 및 실시 시기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안전점검을 실시한 다음 연도의 3월 1일까지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9. 25.]

제12조의3(준공보고서 및 준공확인증명서) ①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준공보고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준공검사조서(영 제27조의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준공시설의 현황측량도(축척 1천200분의 1)
3.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과 대비표(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총사업비 명세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시설물 또는 토지의 사업비에 한정한다)

②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9. 6. 7.]

제12조의4(준공 전 사용허가 등) 법 제25조의3제3항 단서 및 영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비지정권자 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와 협의를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거나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서류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 가. 준공 전 사용대상시설의 사진 1부
 - 나. 준공 전 사용계획서 1부
2.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가.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나.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1부

다.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

[본조신설 2019. 6. 7.]

제13조(귀속 어항시설의 무상사용·수익 절차 등) ①지정권자가 아닌 자로서 법 제2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지정권자”라 한다)가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무상사용·수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사용위치의 실측도 1부

②영 제30조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기간의 기산일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 한다.<개정 2019. 6. 7.>

③지정권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무상사용·수익기간이 종료되기 3월전에 그 종료사실을 비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2014. 9. 25.>

제15조(재산의 등기에 따른 통보 등) ①지정권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등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어항관리청(이하 “어항관리청”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25.>

1. 해당 어항시설의 지번·종류·구조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2. 해당 어항시설의 관리·이용 상황 및 특기사항

3. 해당 어항시설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과 지적도 등본

4. 해당 어항시설의 등기사항증명서

②지정권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등기 이전이라도 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시설을 준공한 경우로서 어항의 안전한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어항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9. 25., 2019. 6. 7.>

1.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

2. 해당 어항시설의 준공확인증명서 사본(영 제27조의3에 따른 준공확인의 특례 적용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 사본)

제16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또는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중 “항만시설관리권”은 “어항시설관리운영권”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권

자”로,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는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등록원부”로,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신청서접수대장”은 “어항시설관리운영권등록신청서접수대장”으로 본다. <개정 2008. 3. 3., 2013. 3. 24.>

제17조 삭제 <2019. 6. 7.>

제4장 어항시설의 관리 및 사용

제18조(어항관리규정) 법 제36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어항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9. 25.>

1. 어항관리청 및 이용단체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
2. 어항시설의 재해예방대책 및 재해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
3. 어항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어항시설의 관리·보수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어항 내의 해양오염 방지, 환경개선 및 위생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그 구역에 설치된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어항시설의 관리와 점용·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8. 어항시설의 점용·사용에 따른 사용료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9. 제19조에 따른 어항관리협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10. 그 밖에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6. 4.]

제19조(어항관리협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관리협회(이하 “어항관리협회”라 한다)는 어항관리청에 두되, 국가어항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공판장이 개설된 지방어항별로 설치하며, 각각의 어항관리협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어항관리협회의 위원장은 어항관리청의 어항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어항관리청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관할구역의 수산업협동조합장 중에서 지명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개정 2018. 5. 29.>

1. 관할구역 안의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
2. 관할구역 안의 어촌계장
3. 관할구역 안의 어업인 대표 및 어항이용자 대표

③어항관리협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개정 2014. 9. 25., 2021. 6. 30.>

1. 해당 어항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해당 어항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
3. 해당 어항의 환경 유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⑤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어항시설의 사용·점용허가 등)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어항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9.>

1. 사업계획서(사용계획 및 시설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신청지 위치평면도(축척 1천200분의 1)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1부

② 어항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7.>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사용·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사용·점용기간의 연장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어항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허가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어항시설의 사용·점용신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점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어항시설 사용·점용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용계획서 및 사용위치 평면도(축척 1천200분의 1)를 첨부하여 어항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의 접안·정박에 따른 사용·점용신고시에는 사용계획서 및 사용위치 평면도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0. 29.>

제22조 삭제 <2016. 12. 1.>

제23조(어항시설의 사용협의 등) ① 법 제38조제7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어항관리청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7.>

1. 사용·점용의 목적
2. 사용·점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위치 및 규모
3. 사용·점용의 기간
4. 사업계획 및 사용·점용지의 위치평면도(축척 1천 200분의 1)

② 어항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어항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사용기간의 연장) ①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의 사용·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8조제8항에 따라 그 사용·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어항시설 사용·점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25., 2019. 6. 7.>

②연장허가의 기간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제3항중 “ 별지 제15호서식의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변경)신청서 ”는 “ 별지 제18호서식의 어항시설 사용·점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로 본다.

③ 어항관리청은 법 제38조제8항에 따른 어항시설의 사용·점용허가기간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어항시설의 사용·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기간이 종료되기 3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4. 9. 25., 2019. 6. 7.>

제25조(어항시설의 관리비용) 영 제39조제2항제4호에서 “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비용 ”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4.>

1. 어항구역 및 어항시설의 측량·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2. 어항시설에 대한 경비인력 배치에 소요되는 비용

제26조(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 ① 삭제 <2018. 5. 29.>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민원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표준화된 서식과 표준전자문서를 개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3., 2013. 3. 24., 2018. 5. 29.>

③어항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민원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지정권자 또는 어항관리청에 이용신청을 하여 등록번호 및 비밀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개정 2018. 5. 29.>

④지정권자 또는 어항관리청은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민원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5. 29.>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 3. 3., 2013. 3. 24., 2018. 5. 29.>

[제목개정 2018. 5. 29.]

제4장의2 어촌·어항재생 <신설 2020. 2. 26.>

제26조의2(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47조의3제4항 단서에서 “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42조의3제4호에 따른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2. 26.]

[종전 제26조의2는 제26조의3으로 이동 <2020. 2. 26.>]

제5장 보칙

제26조의3(교육·훈련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의 대상 및 교육방법
3. 교육·훈련의 내용
4. 그 밖의 교육·훈련 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4. 9. 25.]

[제2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6조의3은 제26조의4로 이동 <2020. 2. 26.>]

제26조의4(바다해설사의 양성과정 및 자격 부여) ①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법 제49조의4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바다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바다해설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8.>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바다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제1항에 따른 바다해설사 교육과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 10. 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다해설사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12. 1.]

[제26조의3에서 이동 <2020. 2. 26.>]

제27조(재결신청서) 영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제28조(권리·의무의 승계신고)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상속, 양도·양수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08. 10. 29., 2014. 9. 25., 2015. 1. 8., 2015. 10. 22.>

1. 삭제<2015. 10. 22.>

2. 삭제<2015. 10. 22.>

제29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6조의4 및 별표 3에 따른 바다해설사의 양성과정 및 자격 부여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2. 24.]

부칙 <제318호, 2005. 12. 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어항법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 규칙 제12조·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은 이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관리청별로 어항관리규정을 제정·시행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380호, 2007. 8.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 2008. 3. 3.>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4# 까지 생략

4\$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6항, 제7조제7항, 제9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후단, 제26조제2항·제5항, 제28조,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중 “지방해양수산청”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삭제한다.

4%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35호, 2008. 10. 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공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준공 보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5호, 2008. 12. 31.>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⑬ 부터 1^ 까지 생략

부칙 <제127호, 2010. 6. 4.>

이 규칙은 2010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호, 2011. 2.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호, 2012. 10. 25.>

이 규칙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 2013. 3. 24.>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 까지 생략

3*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7항, 제7조제7항, 제9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후단, 제2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3(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00호, 2014. 9.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제27조에 따른 공공단체가 아닌 자가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안전점검의 실시 기산일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어항시설에 대하여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어항시설의 준공일 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 본다.

제4조(어항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어항관리규정을 정한 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8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생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어항관리규정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127호, 2014. 12. 31.> (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호, 2015. 1. 8.>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업관리단장(어항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어업관리단장, 어항사무소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4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0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어업관리단/어항사무소”를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⑧부터 1(까지 생략

부칙 <제163호, 2015. 10.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호, 2016. 12.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바다해설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한국어촌어항협회의 바다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바다해설사는 제2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바다해설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7호, 2017. 1. 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92호, 2018. 5. 29.>

이 규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호, 2018. 10.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어촌·어항법」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

②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4항제26호 중 “ 한국어촌어항협회 ” 를 “ 「어촌·어항법」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 ” 으로 한다.

부칙 <제342호, 2019. 6. 7.>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2호,2020. 2. 26.>

이 규칙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2호,2020. 4. 6.>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2호,2020. 8. 28.>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업권”을 “어업권·양식업권”으로 한다.

⑮ 및 1[^]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486호,2021. 6. 3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9호,2022. 1. 20.>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6호,2022. 2. 24.>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6호,2025. 3. 11.> (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6. 30.>

어항지정의 기준(제10조 관련)

| | 국가어항 | 지방어항 | 어촌정주어항 | 마을공동어항 | | | | | | | | | | | | | | | |
|--|---|------------------|---------|----------------|-----------|--------------------------------|--|--|--|----------------|-----------|-----------|--------|--|----------------|-----------|-----------|--------|-------------------------------|
| 지정
기준 | <p>1.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항·포구일 것</p> <table> <tr> <td>가. 외래어선 이용빈도(연간)</td> <td>110회 이상</td> </tr> <tr> <td rowspan="2">나. 어선 이용빈도(연간)</td> <td>5,000회 이상</td> </tr> <tr> <td>2,500회 이상이고
아래 2항목 이상 충족할 것</td> </tr> <tr> <td colspan="2"> 1) 배후인구(어항배후 읍·면·동의 인구를 말한다): 광역시는 4만명 이상,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는 4천명 이상
 2) 어항방문객: 연간 40만명 이상
 3) 주변 양식어장의 규모: 1,100ha 이상
 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이 있을 것
 5)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과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유선·도선의 운항 횟수: 주당 14회 이상 </td> </tr> </table> <p>2. 도서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항목 중 50% 이상을 충족할 것</p> | 가. 외래어선 이용빈도(연간) | 110회 이상 | 나. 어선 이용빈도(연간) | 5,000회 이상 | 2,500회 이상이고
아래 2항목 이상 충족할 것 | 1) 배후인구(어항배후 읍·면·동의 인구를 말한다): 광역시는 4만명 이상,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는 4천명 이상
2) 어항방문객: 연간 40만명 이상
3) 주변 양식어장의 규모: 1,100ha 이상
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이 있을 것
5)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과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유선·도선의 운항 횟수: 주당 14회 이상 | | <p>1.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항·포구일 것</p> <table> <tr> <td>가. 어선 이용빈도(연간)</td> <td>2,500회 이상</td> </tr> <tr> <td>나. 현지어선 수</td> <td>30척 이상</td> </tr> </table> <p>2. 도서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항목 중 50% 이상을 충족할 것</p> | 가. 어선 이용빈도(연간) | 2,500회 이상 | 나. 현지어선 수 | 30척 이상 | <p>1.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항·포구일 것</p> <table> <tr> <td>가. 어선 이용빈도(연간)</td> <td>1,250회 이상</td> </tr> <tr> <td>나. 현지어선 수</td> <td>10척 이상</td> </tr> </table> <p>2. 도서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항목 중 50% 이상을 충족할 것</p> | 가. 어선 이용빈도(연간) | 1,250회 이상 | 나. 현지어선 수 | 10척 이상 |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외의 항·포구일 것 |
| | 가. 외래어선 이용빈도(연간) | 110회 이상 | | | | | | | | | | | | | | | | | |
| 나. 어선 이용빈도(연간) | 5,000회 이상 | | | | | | | | | | | | | | | | | | |
| | 2,500회 이상이고
아래 2항목 이상 충족할 것 | | | | | | | | | | | | | | | | | | |
| 1) 배후인구(어항배후 읍·면·동의 인구를 말한다): 광역시는 4만명 이상,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는 4천명 이상
2) 어항방문객: 연간 40만명 이상
3) 주변 양식어장의 규모: 1,100ha 이상
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이 있을 것
5)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과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유선·도선의 운항 횟수: 주당 14회 이상 | | | | | | | | | | | | | | | | | | | |
| 가. 어선 이용빈도(연간) | 2,500회 이상 | | | | | | | | | | | | | | | | | | |
| 나. 현지어선 수 | 30척 이상 | | | | | | | | | | | | | | | | | | |
| 가. 어선 이용빈도(연간) | 1,250회 이상 | | | | | | | | | | | | | | | | | | |
| 나. 현지어선 수 | 10척 이상 | | | | | | | | | | | | | | | | | | |

※ 비고:

1. 이 표에서 “어선” 이나 그 밖의 선박이란 동력선을 말한다.
2. 이 표에서 “현지어선” 이란 지정하려는 항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선적을 두고, 지정하려는 항을 근거지로 이용하는 어선을 말한다.
3. 이 표에서 “외래어선” 이란 지정하려는 항을 관할하는 시·군·구 외의 지역에 선적을 두고, 지정하려는 항을 이용하는 어선을 말한다.
4. 이 표에서 “이용빈도”란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 및 「남시 관리 및 육성법」 제33조에 따라 신고한 실적(출·입항을 기준으로 한다)을 말한다.

다.

5. 이 표에서 “어항방문객”은 통신사의 통신데이터 등 통신자료를 활용하여 지정하려는 항으로 유입되는 인구수를 집계하여 산정한다.
6. 이 표에서 “주변 양식어장”이란 지정하려는 항을 기준으로 반경 13km 이내에 소재한 어장의 면적을 말한다.
7. 이 표에서 “도서”란 육지에서 떨어진 섬을 말하며,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경우에는 그 연결된 때부터 10년 이내까지는 도서로 본다.
8. 그 밖에 이 표의 관련 기준치는 해당 기준을 관장하는 기관의 통계자료(주민등록 인구수 등)나 확인서에 따른다.

■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별표 2] <신설 2014.9.25.>

안전점검의 대상 및 실시 시기 등(제12조의2제1항 관련)

1. 안전점검의 대상: 국가어항 또는 지방어항의 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기본시설

2.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가. 법 제2조제5호가목1) 및 2)에 따른 외곽시설 및 계류시설

| 구분 | 실시시기 |
|---------|---|
| 1) 정기점검 | 가) 중점관리시설: 반기 1회 이상
나) 일반관리시설: 연 1회 이상 |
| 2) 긴급점검 | 어항시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어항시설의 기능과 성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나) 어항시설의 붕괴, 침하, 유실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그 밖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
| 3) 정밀점검 | 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
(1) 중점관리시설: 해당 어항시설의 준공일 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4년마다 1회 이상
(2) 일반관리시설: 해당 어항시설의 준공일 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6년마다 1회 이상
나)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상 위험이 있어 어항시설 긴급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나. 법 제2조제5호가목3)에 따른 수역시설: 수중의 매몰물(埋沒物) 또는 지장물(支障物) 발생 등으로 선박의 안전 항행과 정박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어항시설의 등급 구분

| 등급 | 어항시설의 상태 |
|-----------|--|
| A
(우수)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 B
(양호)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 C
(보통)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어항시설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 | |
|-----------|---|
| D
(미흡)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 E
(불량)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어항시설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시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비 고

1. 중점관리시설: 법 제2조제5호가목1) 및 같은 목 2)에 따른 외곽시설 및 계류시설 중 방파제, 방사제, 파제제, 안벽, 잔교 및 부잔교를 말한다.
2. 일반관리시설: 법 제2조제5호가목1) 및 같은 목 2)에 따른 외곽시설 및 계류시설 중 중점관리시설 이외의 외곽시설 및 계류시설을 말한다.
3. 최초로 실시하는 제2호가목1)에 따른 정기점검은 안전점검 대상 시설의 준공일 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4.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수·보강 등을 위하여 공사 중이거나 철거예정인 안전점검 대상 어항시설로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어항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5. 3. 11.>

바다해설사 교육과정(제26조의4 관련)

1. 기본교육: 40시간

| 교육분야 | 교육내용 | 교육시간(시간) |
|-----------|----------------------------------|----------|
| 기본소양 | 바다해설사의 역할 | 10 |
| | 해양수산 관련 정부 정책의 이해 | |
| 바다에 대한 이해 | 어촌의 문화 및 역사 | 20 |
| | 바다관광 마케팅 | |
| | 안전사고 예방 교육 | |
| 분임토의 | 바다해설사의 기본소양 및 바다에 대한 이해에 관한 분임토의 | 10 |

2. 전문교육: 53시간

| 교육분야 | 교육내용 | 교육시간(시간) |
|-------------|-------------------|----------|
| 해설기법 | 수산자원 활용 해설기법 | 15 |
| | 대상별 해설기법 | |
| |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해설기법 | |
| 수산업에 대한 이해 | 어구 및 어업방법 등 어업 전반 | 10 |
| | 지역별 수산물 및 어업 | |
| 바다생태에 대한 이해 | 한국의 바다 환경과 생물 등 | 12 |
| | 지역별 바다 환경과 생물 등 | |
| 현장실습 | 해설 현장에서 실습 교육 | 16 |

■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2. 26.>

준공 보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4일 |
| 보고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사업의 명칭 | | |
| 소재지 | | |
| 사업의 내용 | | |
| 사업기간 | | |
| 준공일 | | |

「어촌·어항법」 제10조제1항·제25조의3제1항·제47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 []어항개발사업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준공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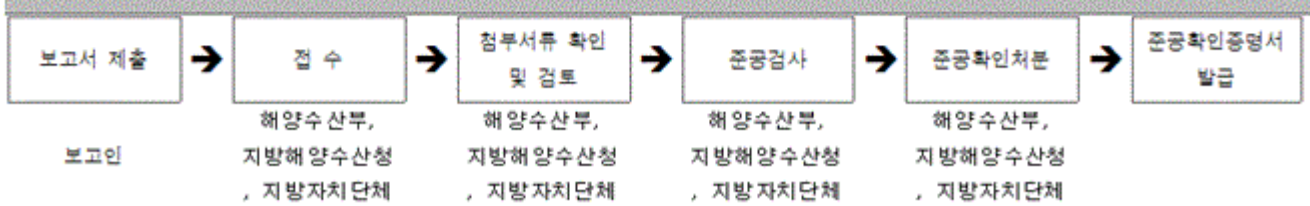
보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준공조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또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준공검사조서(「어촌·어항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책임감리대상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수수료 |
| | 2. 준공시설의 현황측량도(축척 1천200분의 1)
3.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과 대비표(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총사업비 명세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시설물 또는 토지의 사업비에 한정한다) | 없음 |

처리절차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2. 26.>

준공확인증명서

| | | |
|----------|---------|--------------|
| 사업시행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 전화번호 | |
| 사업명 | | |
| 시설내역 | | |
| 사업기간 | | |
| 국가귀속대상시설 | | |
| 허가조건 | | |

「어촌·어항법」 제10조제2항·제25조의3제2항·제47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 []어항개발사업 []어촌·어항재생사업에 대한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6. 7.>

준공전 사용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일 |
| 신고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사업개요 | 사업명 | 허가연월일 |
| | 소재지 | |
| | 사업내용 | |
| | 전체공사 준공예정일 | |
| 준공전
사용
(신고내용) | 대상시설 | 사용기간 |
| | 사유 | |

「어촌·어항법」 제10조제3항 단서, 제25조의3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27조의 4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12조의4에 따라 준공전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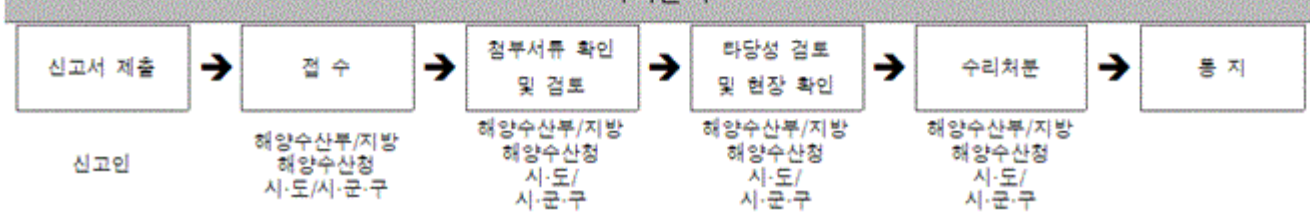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준공전 사용대상시설의 사진 1부
2. 준공전 사용계획서 1부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2. 26.>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사업개요 | 사업명 | 허가연월일 |
| | 소재지 | |
| | 사업내용 | |
| | 전체공사 준공예정일 | |
| 준공전
사용
(신청내용) | 대상시설 | 사용기간 |
| | 사유 | |

「어촌·어항법」 제10조제3항 단서, 제25조의3제3항 단서, 제47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27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12조의4에 따라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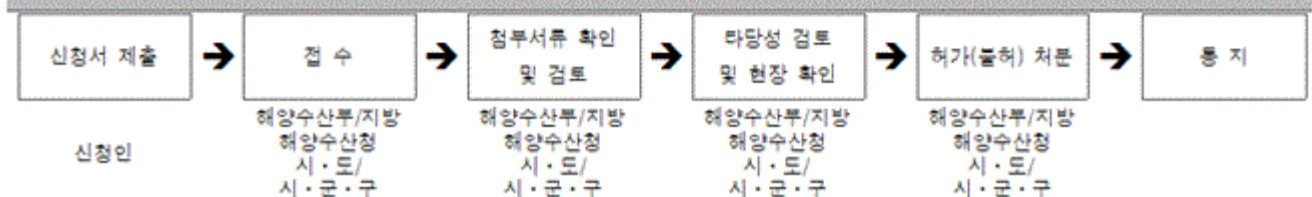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2.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1부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2. 26.>

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어항재생시설 기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사업의 권역 | 권역 |
| 사업권역 소재지 | |
| 사업의 종류 | |
| 사업시행 확정 승인 번호
또는 고시번호와 연월일 | 승인번호
(고시번호) - 호[년 월 일] |
| 사업시행자 | |
| 기부신고면적 | |

위 표시 기부시설 또는 토지를 「어촌·어항법」 제12조제1항·제47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시행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어항재생시설 기부조서 | 수수료 |
| | 2. 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어항재생시설 무상편입도(축척 1천분의 1) 또는 그 확정도(부지조성의 경우에는 축척 1천분의 1, 시설물 설치의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 | 없음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어항재생시설 기부조서

[illegible]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 2. 26.>

국·공유지 무상양여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사업권역명 | 권역 |
| 사업권역 소재지 | |
| 사업의 종류 | |
| 사업시행확정승인번호
또는 고시번호와 연월일 | 승인번호
(고시번호) - 호[년 월 일] |
| 사업시행자 | |
| 양여신청면적 | |

위 표시 국·공유지를 「어촌·어항법」 제12조제2항·제47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무상양여를 받고자 신청하오니 양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시행자)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신청인
첨부서류 | 1.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국·공유지 무상양여지조서 1부
2. 위치도(축척 50,000분의 1) 1부
3. 국·공유지 무상양여도 또는 신규대조도(축척 1천 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1부 | 수수료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토지대장
2. 지적도 | 없음 |

[illegible]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2. 26.>

국·공유지 인수증서

| | |
|-------------------------------|-------------------------------------|
| 사업권역명 | 권역 |
| 사업권역 소재지 | |
| 사업의 종류 | |
| 사업시행 확정 승인 번호
또는 고시번호와 연월일 | 승인번호
(고시번호) - 호[년 월 일] |
| 사업시행자 | |
| 준공연월일 | |
| 무상편입연월일 | |
| 편입재산 | 별첨목록과 같음 |

「어촌·어항법」 제12조제1항·제47조의7에 따라 위 재산을 편입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6항에 따라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 | |
|------|-----------------|-----|
| 첨부서류 | 무상편입도 또는 확정도 1부 | 수수료 |
| | | 없음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국·공유지 인수재산목록

[illegible]

■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0. 2. 26.>

국·공유지 무상양여증서

| | |
|-------------------------------|-------------------------------------|
| 사업권역명 | 권역 |
| 사업권역 소재지 | |
| 사업의 종류 | |
| 사업시행 확정 승인 번호
또는 고시번호와 연월일 | 승인번호
(고시번호) - 호[년 월 일] |
| 사업시행자
(양여받은 자의 주소, 성명) | |
| 준공연월일 | |
| 양여결정연월일 | |
| 양여결정면적(㎡) | |
| 양여재산 | 별첨목록과 같음 |

「어촌·어항법」 제12조제2항·제47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7항에 따라 위 국·공유재산을 무상양여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국·공유지 무상양여지 재산목록

[illegible]

■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20. 2. 26.>

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어항재생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30일(현장실사 및 제출 서류미비 등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사용시설 | 시설의 명칭 | 사용 면적(㎡) |
| | 위치 | |
| 사용목적 | | |
| 사용기간 | | |
| 사용내용 | | |
| 사용방법 | | |
| 사용이유 | | |
| 회계내역 | | |

「어촌·어항법」 제14조제1항 본문·제47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어항재생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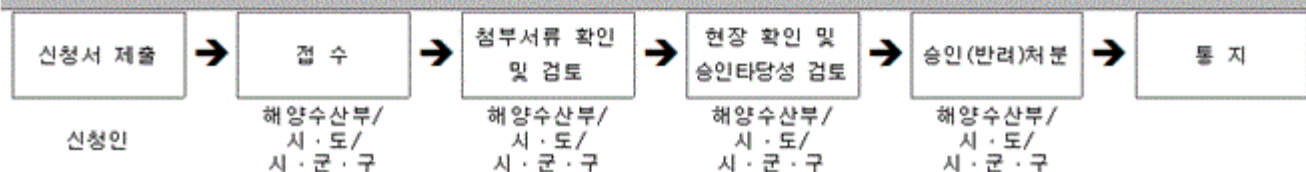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처리절차



■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0. 2. 26.>

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어항재생시설 폐지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
| 신청인 | 기관(단체명) | |
| | 전화번호 | |
| | 주소 | |
| 폐지시설
내역 | 시설명 | |
| | 시설위치 | |
| 폐지사유 | | |
| 폐지하는 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어항재생시설 처리계획 | | |
| 시설 및 재산의 매각대금사용계획 | | |

「어촌·어항법」 제15조·제47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어항재생시설의 폐지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단체)의 장

(인)

귀하

| | | |
|------|----------------------|-----------|
| 첨부서류 | 폐지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 | | | | | | |
|---------------|---|------------------------|---|------------------------------------|---|--------------------------|---|--------------------------|---|-----|
| 신청서 제출
신청인 | → | 접 수
해양수산부
/시·도·구 | →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해양수산부
/시·도·구 | → | 현장 확인
해양수산부
/시·도·구 | → | 승인 처분
해양수산부
/시·도·구 | → | 통 지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1.8.>

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20일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어항의 명칭 | 소재지 |
| | 공사의 종류 | |
| | 공사의 목적 | |
| | 시설이용계획 | |
| | 공사장소 | 공사규모 |
| | 공사기간 | |
| | 공사방법 | |

「어촌·어항법」 제2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을 위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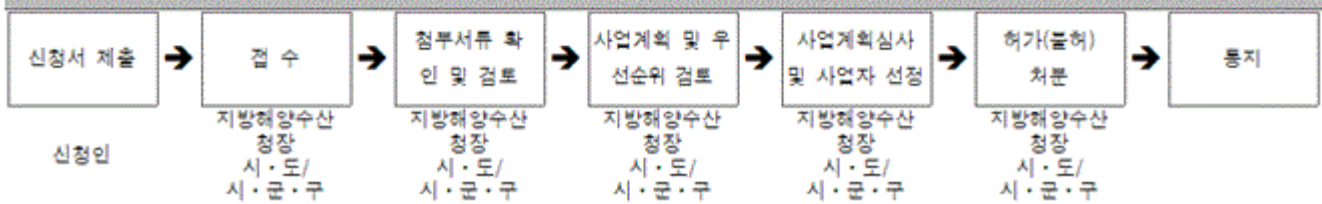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공사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 수수료 |
| | 2.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1부 | |
| | 3. 사용 또는 점용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 1부 | 없음 |
| | 4.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 | 5. 평면도·정면도 및 측면도(건축 또는 기계·설비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 | 6.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그 산출내역서 1부 | |
| | 7. 자금조달계획서(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 |
| | 8.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또는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지적평면도와 인접지역을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1부 | |

처리절차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1.2.9>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증

| | | |
|------|------------|--------------|
| 허가번호 | | |
| 피허가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 전화번호 | |
| 허가사항 | 공사의 종류 | |
| | 공사의 목적 | |
| | 공사장소 | |
| | 공사규모 및 사업비 | |
| | 공사기간 | |
| | 공사방법 | |
| | 허가조건 | |

「어촌·어항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지정권자 관인

| | |
|----------|------|
| 허가기관 연락처 | |
| 부서 | 전화번호 |
| 주소 | |

210mm×297mm[신문용지 64g/㎡(재활용품)]

■ 어촌·어항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5.1.8.>

무상사용·수익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
| 신고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 |
| | 전화번호 | | |
| 신고내용 | 어항의 명칭 | | |
| | 소재지 | | |
| | 사업허가일 | 사업준공일 | |
| | 사용 목적 | | |
| | 사용 규모 | | |
| | 사용 기간 | | |

「어촌·어항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귀속어항시설의 무상사용·수익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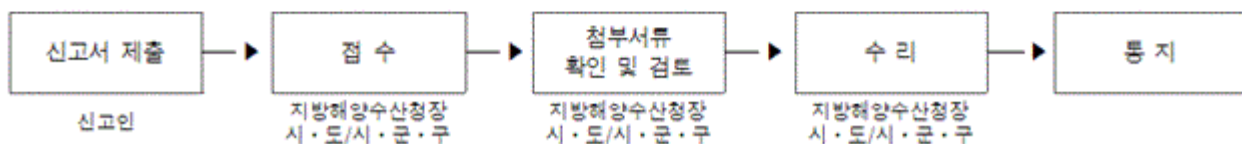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사용위치의 실측도(축척 1:200분의 1) 1부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210mm×297mm[신문용지 64g/m²(재활용품)]

■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1.2.9>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 |
| | 전화번호 | | |
| 신청내용 | 어항의 명칭 | 어항시설의 종류 | |
| | 어항시설 위치 | 어항시설 규모 | |
| | 사용(점용)의 목적 | | |
| | 사용(점용) 기간 | | |
| | 선박명 | 총톤수 | |
| | 선박의 길이 | 선박의 폭 | 선박의 깊이(홀수) |
| | 사용(점용) 조건 | | |
| | 원상회복 방법 | | |

「어촌·어항법」 제3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3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점용(변경)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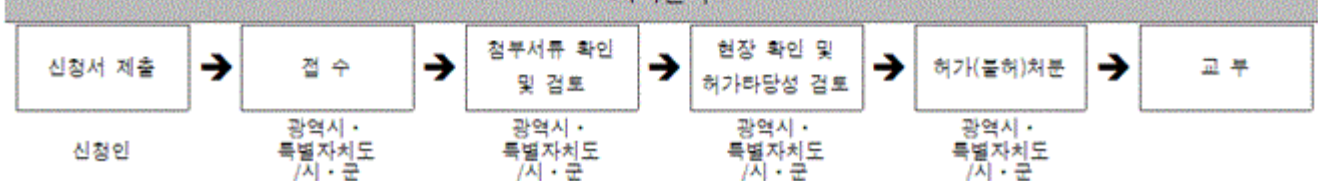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사용계획 및 시설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신청지 위치평면도(축척 1:200분의 1)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허가번호 | |
|------|---|
| 사용자 |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허가내용 | 여항의 명칭 여항시설의 종류 |
| | 여항시설 위치 여항시설 규모 |
| | 사용(점용)의 목적 |
| | 사용(점용) 기간 . . . 일부터 . . . 일까지 (. . . 일간) |
| | 사용(점용)료 |
| | 사용(점용) 조건 |

no auto r51

| | |
|----------|------|
| 허가기관 연락처 | |
| 부서 | 전화번호 |
| 주소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촌·어항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1.2.9>

어항시설 사용·점용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 | | | | |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3일 | | | |
| 신고인 | 성명(법인명) |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
| | 주소 | | | | | | |
| | 전화번호 | | | | | | |
| 어항의 명칭 | | | | 소재지 | | | |
| 신청내용 | 구분 | 시설명 | 위치 | 규모 | 사용목적 | 사용기간 | 비고 |
| | 점안 | | | | | | |
| | 정박 | | | | | | |
| | 야적 | | | | | | |
| | 기타 | | | | | | |
| | 선박 | 선명 | | | 총톤수 | 길이·폭·깊이(홀수) | |

「어촌·어항법」 제3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점용을 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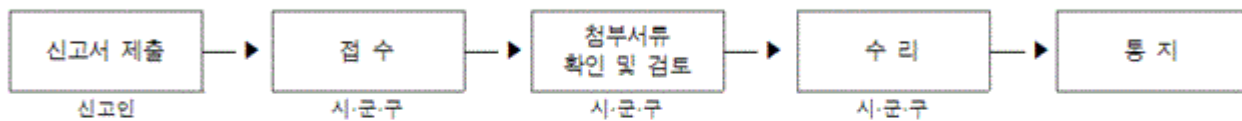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 |
|------|--|-----------|
| 첨부서류 | 사용계획서 및 사용위치 평면도(축척 1:200분의 1). 다만, 선박의 점안·정박에 따른 사용·신고 시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제 호

어항시설 사용신고필증

「어촌·어항법」 제3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점용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신고기관의 장 관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9. 6. 7.>

어항시설 사용·점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일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허가연월일 | 허가번호 |
| | 어항의 명칭 | 어항시설의 종류 |
| | 어항시설 위치 | 어항시설 규모 |
| | 사용(점용)의 목적 | |
| | 당초 사용(점용) 기간 . . . 일부터 . . . 일까지 (. . . 일간) | |
| | 연장 사용(점용) 기간 . . . 일부터 . . . 일까지 (. . . 일간) | |
| | 연장사유 | |

「어촌·어항법」 제3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점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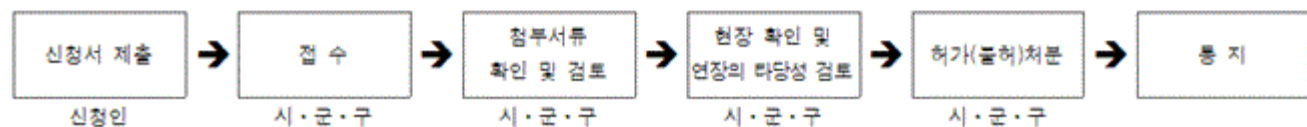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 |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 없음 |
|------|----|-----|----|

처리절차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1.2.9>

재결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20일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처분명 | |
| | 손실발생의 사실 | |
| |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 | |
| | 재결 신청자가 산출한 손실액 | |
| | 협회의 경과 | |
| 기타 필요한 사항 | | |

「어촌·어항법」 제5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재결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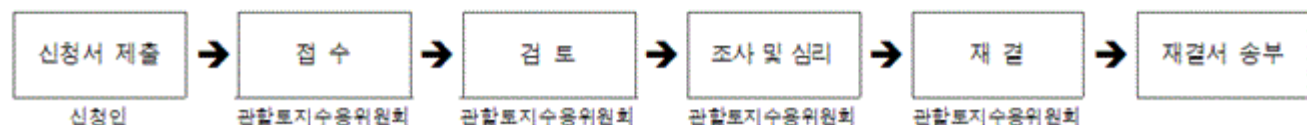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귀하

처리절차



210mm×297mm[신문용지 64g/㎡(재활용품)]

■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2. 1. 20.>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리·의무승계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일 | | |
|------------------------------|-----------------|-------|----|--|--|
| 양수인 · 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 | 성명(법인명) | | | | |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 |
| | 주소(법인소재지) | | | | |
| 양도인 · 피상
속인 또는
합병 전 법인 | 성명(법인명) | | | | |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 |
| | 주소(법인소재지) | | | | |
| 신고내용 | 허가일 및 근거 | | | | |
| | 허가목적 및 개요 | | | | |
| | 준공예정일 | 공사공정율 | | | |
| | 권리·의무 승계(합병) 일자 | | | | |
| | 권리·의무 승계(합병) 사유 | | | | |

「어촌·어항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명)

(서명 또는 인)

해상보안 및 경비관련법규

1.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해양경비법
5. 해양경비법 시행령
6.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125호, 2024. 1. 23.,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051 - 773 - 5852, 5851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 051 - 773 - 5778, 578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과 그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항해와 관련한 보안상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09. 6. 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국제항해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2. “항만시설”이란 국제항해선박과 선박항만연계활동이 가능하도록 갖추어진 시설로서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선박항만연계활동”이란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 사이에 승선·하선 또는 선적·하역과 같이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을 수반하는 상호작용으로서 그 활동의 결과 국제항해선박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4. “선박상호활동”이란 국제항해선박과 국제항해선박 또는 국제항해선박과 그 밖의 선박 사이에 승선·하선 또는 선적·하역과 같이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을 수반하는 상호작용을 말한다.
5. “보안사건”이란 국제항해선박이나 항만시설을 손괴하는 행위 또는 국제항해선박이나 항만시설에 위법하게 폭발물 또는 무기류 등을 반입·은닉하는 행위 등 국제항해선박·항만시설·선박항만연계활동 또는 선박상호활동의 보안을 위협하는 행위 또는 그 행위와 관련된 상황을 말한다.
6. “보안등급”이란 보안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의 정도를 단계적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등급구분 방식을 반영한 것을 말한다.
7. “국제항해선박소유자”란 국제항해선박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국제항해선박의 소유자·관리자로부터 선박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8. “항만시설소유자”란 항만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항만시설의 소유자·관리자로부터 그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9. “국가보안기관”이란 국가정보원、국방부、관세청、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등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 12. 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

가. 모든 여객선

나.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

다. 이동식 해상구조물(천연가스 등 해저자원의 탐사、발굴 또는 채취 등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적 또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과 선박 항만연계활동이 가능한 항만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상업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국제협약과의 관계)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 협약의 보안기준과 이 법의 규정내용이 다른 때에는 국제협약의 효력을 우선한다. 다만, 이 법의 규정내용이 국제협약의 보안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국가항만보안계획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0년마다 항만의 보안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국가항만보안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국가항만보안계획은 제34조에 따른 보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국가항만보안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의 보안에 관한 기본방침

2. 항만의 보안에 관한 중、장기 정책방향

3. 항만의 보안에 관한 행정기관의 역할

4. 항만의 보안에 관한 항만시설소유자의 역할

5. 항만에서의 보안시설、장비의 설치 및 경비、검색인력의 배치

6. 항만시설보안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계획

7. 보안사건에 대한 대비、대응조치

8. 항만보안에 관한 국제협력

9. 그 밖에 항만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항만보안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항만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가항만보안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청장은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12. 2.>

⑤ 제4항에 따라 국가항만보안계획을 통보받은 지방청장은 국가항만보안계획에 따른 관할 구역의 항만에 대한 보안계획(이하 “지역항만보안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6. 12. 2.>

⑥ 지방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역항만보안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12. 2.>

⑦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청장은 국가항만보안계획과 지역항만보안계획이 수립된 후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외 보안여건을 시급히 반영하여야 하는 등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가항만보안계획과 지역항만보안계획의 변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12. 2.>

⑧ 제7항에 따라 국가항만보안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에 따르고, 지역항만보안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의 절차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⑨ 지역항만보안계획의 세부내용·수립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보안등급의 설정·조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등급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보안등급의 근거가 되는 보안사건의 발생 위험의 정도가 변경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안등급을 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정·조정된 보안등급을 해당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항만시설소유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안등급을 설정하거나 조정하는 경우 제34조에 따른 보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등급별로 국제항해선박 또는 항만시설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보안조치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정하여진 세부적인 보안조치사항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한 보안사고의 발생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수하여야 하는 보안조치를 별도로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장 국제항해선박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제7조(총괄보안책임자) 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전체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선원 외의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지식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보안책임자(이하 “총괄보안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의 종류 또는 선박의 척수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인 이상의 총괄보안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국제항해선박소유자가 1척의 국제항해선박을 소유하거나 관리·운영하는 때에는 그 국제항해선박소유자 자신을 총괄보안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소유자가 총괄보안책임자를 지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총괄보안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총괄보안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제9조에 따른 선박보안평가
2. 제10조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작성 및 승인신청
3. 제36조에 따른 내부보안심사
4.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무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총괄보안책임자가 제3항에 따른 사무를 게을리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 대하여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8조(선박보안책임자) 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운영하는 개별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선박의 선원 중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지식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보안책임자(이하 “선박보안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선박보안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제10조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변경 및 그 시행에 대한 감독
2. 보안상의 부적정한 사항에 대한 총괄보안책임자에의 보고
3. 해당 국제항해선박에 대한 보안점검
4.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무

제9조(선박보안평가) 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운영하는 개별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 보안과 관련한 시설·장비·인력 등에 대한 보안평가(이하 “선박보안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박보안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국제항해선박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그의 주소지를 말한다)에 보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제10조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선박보안평가의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0조(선박보안계획서) 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제9조에 따른 선박보안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취약요소에 대한 개선방안과 보안등급별 조치사항 등을 정한 보안계획서(이하 “선박보안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선박에 비치하고 동 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선박보안계획서에는 보안사고와 같은 보안상의 위협으로부터 선원·승객·화물·선용품 및 선박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보안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선박보안계획서를 작성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박보안계획서의 내용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선박보안계획서를 승인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보안계획서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관계 국가보안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제3항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1조(선박보안심사 등) 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운영하는 개별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적절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안심사(이하 “선박보안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최초보안심사 :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를 처음으로 교부받으려는 때에 행하는 심사

2. 갱신보안심사 : 제13조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행하는 심사

3. 중간보안심사 : 최초보안심사와 갱신보안심사 사이 또는 갱신보안심사와 갱신보안심사 사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행하는 심사

②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제1항제1호의 최초보안심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국제항해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박보안평가의 실시, 선박보안계획서의 작성·시행 등에 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보안심사(이하 “임시선박보안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항해선박에서 보안사건이 발생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 선박보안계획서의 작성·시행 등에 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보안심사(이하 “특별선박보안심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선박보안심사·임시선박보안심사 및 특별선박보안심사의 세부내용과 그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2조(국제선박보안증서의 교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최초보안심사 또는 갱신보안심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국제선박보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간보안심사 또는 특별선박보안심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심사 결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보안심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이하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해당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유효기간) ①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유효기간을 5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간보안심사에 불합격한 선박의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심사에 합격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제14조(국제선박보안증서등 미소지 국제항해선박의 항해금지) 누구든지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을 비치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항해에 사용하여야 하는 때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제15조(선박보안기록부의 작성·비치) 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운영하는 개별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 보안에 관한 위협 및 조치사항 등을 기록한 장부(이하 “선박보안기록부”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선박보안기록부의 기재사항·작성방법 및 비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6조(선박이력기록부의 비치 등) 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운영하는 개별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박의 선명,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박식별번호, 소유자 및 선적지 등이 기재된 장부(이하 “선박이력기록부”라 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②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선박이력기록부의 기재사항 중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선박이력기록부를 다시 교부받아 이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③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운영하는 개별 국제항해선박의 국적이 변경된 경우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국가의 해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④ 선박이력기록부의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7조(선박보안경보장치 등) 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운영하는 개별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 선박에서의 보안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위험에 처한 경우 그 상황을 표시하는 발신장치(이하 “선박보안경보장치”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선박보안평가의 결과 선박의 보안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하거나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6. 12. 27.>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보안경보장치에서 발신하는 신호(이하 “보안경보신호”라 한다)를 수신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항해선박으로부터 보안경보신호를 수신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국제항해선박이 해외에 있는 경우로서 그 선박으로부터 보안경보신호를 수신한 때에는 그 선박이 항행하고 있는 해역을 관할하는 국가의 해운관청에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④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보안경보신호의 수신을 통보 받은 때에는 해당 선박의 보안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삭제 <2016. 12. 27.>
- ⑥ 선박보안경보장치의 성능요건·설치장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2. 12. 18., 2013. 3. 23., 2016. 12. 27.>

제18조(선박식별번호)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제항해선박은 개별 선박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여된 번호(이하 “선박식별번호”라 한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총톤수 100톤 이상의 여객선
2. 총톤수 300톤 이상의 화물선

② 선박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9조(항만국통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의 항만 안에 있거나 대한민국의 항만에 입항하려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의 보안관리체제가 협약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점검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이하 “항만국통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항만국통제를 위한 확인·점검의 절차는 유효한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비치 여부만을 확인하는데 한정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선박이 협약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명백한 근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의 결과 제2항 단서에 따른 명백한 근거가 있거나 유효한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출항정지·이동제한·시정요구·추방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대한민국의 항만에 입항하려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은 그 항만에 입항하기 24시간 이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의 보안에 관한 정보(이하 “선박보안정보”라 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악화 등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긴급히 입항하거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항과 동시에 선박보안정보를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선박보안정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선박보안정보를 검토한 결과 제2항 단서에 따른 명백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동제한·시정요구·선박점검 또는 입항거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으로 인하여 그 항만에 정박하고 있는 다른 선박 또는 항만시설에 보안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에는 추가적으로 그 사실을 관계 국가보안기관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및 제6항의 조치를 취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그 취지를 해당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및 제6항의 조치를 취한 때에는 해당 선박에 대하여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을 교부한 국가의 정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선박의 입항이 거부되거나 추방된 때에는 해당 선박의 다음 기항지 국가 및 그 연안국의 정부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⑨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출항정지·이동제한·시정요구·추방·선박점검 또는 입항거부 등의 명령(이하 “시정명령등”이라 한다)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등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불복사유를 기재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⑩ 제9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정명령등의 위법·부당 여부를 직접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통보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⑪ 시정명령등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등의 세부내용, 제4항에 따른 선박보안정보의 통보절차 및 제9항에 따른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0조(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외국의 항만당국이 실시하는 항만국통제에 의하여 해당 선박의 보안관리체제의 결함이 지적되지 아니하도록 협약 등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항해선박이 외국의 항만당국이 실시하는 항만국통제에 의하여 출항정지·입항거부 또는 추방의 조치를 받거나 해당 선박에 대하여 출항정지·입항거부 또는 추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선박의 보안관리체제에 대하여 점검(이하 “특별점검”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점검의 결과 해당 선박의 보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보완의 조치 또는 항해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1조(재심사) ① 제11조에 따른 선박보안심사·임시선박보안심사·특별선박보안심사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특별점검을 받은 자가 그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때에는 그 결과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서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사의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심사를 직접 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통보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선박보안심사·임시선박보안심사 및 특별선박보안심사 또는 특별점검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제30조의2로 이동 <2016. 12. 2.>]

제3장 항만시설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제23조(항만시설보안책임자)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운영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지식 등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보안책임자(이하 “항만시설보안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의 구조 및 기능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항만시설에 대하여 1인의 항만시설보안책임자를 지정하거나 1개의 항만시설에 대하여 2인 이상의 항만시설보안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항만시설보안책임자를 지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항만시설보안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항만시설보안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제25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작성 및 승인신청

2. 항만시설의 보안점검

3. 항만시설 보안장비의 유지 및 관리

4.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무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보안책임자가 제3항에 따른 사무를 게을리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항만시설소유자에 대하여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4조(항만시설보안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에 대하여 보안과 관련한 시설·장비·인력 등에 대한 보안평가(이하 “항만시설보안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항만시설보안평가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해당 항만시설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보안평가에 대하여 5년마다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항만시설에서 보안사건이 발생하는 등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하여 중요한 변화가 있는 때에는 즉시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항만시설보안평가의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5조(항만시설보안계획서)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취약요소에 대한 개선방안과 보안등급별 조치사항 등을 정한 보안계획서(이하 “항만시설보안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동 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는 보안사고와 같은 보안상의 위협으로부터 항만시설(항만운영과 관련된 정보와 전산·통신시스템을 포함한다)·선박·화물·선용품 및 사람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보안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③ 항만시설보안계획서를 작성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내용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계획서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⑤ 제3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승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 제26조(항만시설보안심사 등)**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운영하고 있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제25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적정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안심사(이하 “항만시설보안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최초보안심사 : 제27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처음으로 교부받으려는 때에 실시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행하는 심사
 2. 갱신보안심사 : 제28조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행하는 심사
 3. 중간보안심사 : 최초보안심사와 갱신보안심사 사이 또는 갱신보안심사와 갱신보안심사 사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행하는 심사
-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제1항제1호의 최초보안심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작성·시행 등에 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보안심사(이하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신설 2020. 2. 18.>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에서 보안사건이 발생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항만시설에 대하여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작성·시행 등에 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보안심사(이하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심사·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및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의 세부내용과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 제27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교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최초보안심사 또는 갱신보안심사에 합격한 항만시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간보안심사 또는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에 합격한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심사 결과를 표기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에 합격한 항만시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18.>

④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이하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신설 2020. 2. 18.>

[제목개정 2020. 2. 18.]

제28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의 유효기간) ①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2. 1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갱신보안심사,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중간보안심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에 불합격한 항만시설의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적합한 항만시설보안심사에 합격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불합격처분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보완대책을 제출하는 경우 그 처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24. 1. 23.>

[제목개정 2020. 2. 18.]

제29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 미소지 항만시설의 운영 금지) 누구든지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을 비치한 항만시설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항만시설을 운영하여야 하는 때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제목개정 2020. 2. 18.]

제30조(항만시설보안기록부의 작성·비치)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운영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보안에 관한 위협 및 조치사항 등을 기록한 장부(이하 “항만시설보안기록부”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항만시설에 위치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항만시설보안기록부의 기재사항·작성방법 및 비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30조의2(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 ① 여객선으로 사용되는 대한민국 국적 또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이하 “국제항해여객선”이라 한다)에 승선하는 자는 신체·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2. 2.>

② 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은 해당 국제여객터미널을 운영하는 항만시설소유자가 실시한다. 다만, 파업 등으로 항만시설소유자가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지도·감독 기관의 장이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보안검색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 12. 2.>

④ 항만시설소유자가 제2항 본문에 따라 실시하는 보안검색 중 신체 및 휴대물품의 보안검색의 업무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지도·감독하고, 위탁수하물의 보안검색에 대하여는 관할 세관장이 지도·감독한다.<개정 2016. 12. 2.>

⑤ 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목개정 2016. 12. 2.]

[제22조에서 이동 <2016. 12. 2.>]

제30조의3(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등) ① 항만시설소유자가 이 법에 따른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보안법」 제27조제1항 또는 「철도안전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성능 인증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능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방법·절차 및 성능 인증의 대상이 되는 보안검색장비의 종류와 범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의 운영,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가 운영 중에 계속하여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제30조의4(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의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보안검색장비가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성능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본조신설 2020. 12. 8.]

제30조의5(인증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0조의3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및 점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8.]

제30조의6(시험기관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0조의3에 따른 성능 인증을 위하여 보안 검색장비의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제30조의7(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0조의6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성능시험을 실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기준·방법·절차 등을 위반하여 성능시험을 실시한 경우
5. 제30조의6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6. 성능시험 결과를 거짓으로 조작하여 수행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4. 1. 23.>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1. 23.>

[본조신설 2020. 12. 8.]

제30조의8(수수료)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점검 또는 제30조의6에 따른 성능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제31조(경비·검색인력 및 보안시설·장비의 확보 등)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운영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보안을 확보·유지하고 제30조의2에 따른 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검색인력을 확보하고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신축·증축·개축하거나 설치하고 이를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경비·검색인력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보하여야 한다.<신설 2016. 12. 2.>

1.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의 고용
2. 「경비업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특수경비업무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 중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업체에 대한 경비·검색업무의 위탁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소유자의 추천을 받은 업체로서 자본금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을 갖춘 자를 해당 항만시설의 경비·검색업무의 수탁업체로 지정하여야 한다.<신설 2016. 12. 2.>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2016. 12. 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되어 3개월 이내에 지정 요건을 다시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4. 해당 항만시설의 경비·검색업무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경비·검색에 실패한 경우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6. 12. 2.>

⑥ 제1항에 따라 확보하거나 갖추어야 하는 경비·검색인력 및 보안시설·장비의 세부기준, 제3항에 따른 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의 지정 절차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12. 2.>

제31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범죄 예방 및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운영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상도 기준은 범죄 예방 및 보안에 필요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으로 얻은 영상기록이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기준 및 해상도 기준과 제2항에 따른 운영·관리 지침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32조(항만시설보안정보의 제공 등)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운영하고 있는 항만시설에서 보안사건이 발생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가보안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가보안기관의 장으로부터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운영하고 있는 항만시설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기록 등 보안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정보를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4. 1.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하거나 제공하여야 하는 사항·정보의 내용 및 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33조(항만시설 이용자 등의 의무) ①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보안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1. 항만시설이나 항만 내의 선박에 위법하게 무기[탄저균(炭疽菌), 천연두균 등의 생화학무기를 포함한다], 도검류(刀劍類), 폭발물, 독극물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해물품을 반입·은닉하는 행위
2. 보안사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검문검색 및 지시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행위
3. 항만시설 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정당한 출입절차 없이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
4. 항만시설 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제1항제4호에 따른 항만시설 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의 시설을 항만시설 내외부에서 촬영한 결과물을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발간 또는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재배포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1. 23.>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의 경비·검색업무, 경호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기를 반입하거나 소지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8., 2024. 1. 23.>

④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의 출입절차, 출입자 준수사항, 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2. 18., 2024. 1. 23.>

[제목개정 2024. 1. 23.]

제33조의2(항만시설에서의 드론 비행금지 등) ① 누구든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이하 “드론”이라 한다)을 조종하여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의 공중(空中)구역을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항만시설보안책임자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드론을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항만시설보안책임자에게 사전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 또는 항만시설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비행승인을 받지 아니한 드론이 제1항에 따른 구역에 접근하거나 침입한 경우 해당 드론을 탐지·퇴치·추락·포획하는 등 항만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및 항만시설소유자는 제3항에 따라 드론을 탐지하거나 퇴치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및 항만시설소유자가 소유하거나 관리·운영하는

항만시설 범위 밖의 보안업무에 대하여 협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 23.]

제4장 보칙

제34조(보안위원회) 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보안위원회(이하 “보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보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제5조에 따른 국가항만보안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보안등급의 설정·조정에 관한 사항
 3. 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의 확보 및 유지에 관한 사항
 4.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보안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보안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위원은 3급·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⑤ 보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그 밖에 보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보안합의서의 작성 등) ① 선박보안책임자와 항만시설보안책임자는 선박항만연계활동 또는 선박상호활동을 함에 있어서 상호 간에 이행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보안조치사항에 대한 합의서(이하 “보안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환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사건이 발생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선박보안책임자와 항만시설보안책임자로 하여금 보안합의서를 작성·교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보안책임자와 항만시설보안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보안합의서의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36조(내부보안심사) 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는 선박 및 항만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안상의 활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안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내부보안심사자로 지정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주기로 내부보안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부보안심사의 내용·절차 및 내부보안심사자의 자격요건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37조(보안심사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박보안심사관으로 임명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1. 제10조제3항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2.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선박보안심사·임시선박보안심사 및 특별선박보안심사
3.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교부 등
4. 제16조에 따른 선박이력기록부의 교부·재교부
5. 제19조에 따른 항만국통제에 관한 업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항만시설보안심사관으로 임명하여 항만시설보안심사·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및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0. 2. 18.>

제38조(보안심사업무 등의 대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심사 및 제37조제1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에 관한 보안심사관의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기관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41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4. 제41조제3항에 따른 출입 또는 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5. 제41조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를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대행기관의 지정기준과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39조(보안교육 및 훈련) 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는 총괄보안책임자·선박보안책임자 및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이하 “보안책임자”라 한다)와 보안책임자 외의 자로서 항만시설에서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보안담당자”라 한다)에 대한 보안교육 및 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제항해선박소유자와 항만시설소유자는 각자의 소속 보안책임자로 하여금 해당 선박의 승무원과 항만시설의 경비·검색인력을 포함한 보안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주기로 보안훈련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18.>
- ③ 국제항해선박소유자와 항만시설소유자는 보안책임자 및 보안담당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합동보안훈련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훈련의 간격은 18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④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운영하고 있는 국제항해선박이 외국의 정부 등이 주관하는 국제적인 합동보안훈련에 참여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안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0조(보안교육기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안책임자와 보안담당자에 대한 보안교육 및 제37조에 따른 보안심사관의 자격유지에 필요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안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② 제1항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의 시설 기준·교수 인원 등 지정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안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의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41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4. 제41조제3항에 따른 출입 또는 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5. 제41조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를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⑤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1조(보안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안사건의 발생을 예방하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보안감독관으로 지정하여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8.>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제항해선박소유자, 항만시설소유자, 대행기관 및 보안교육기관 등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내용 및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그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안감독관으로 하여금 직접 해당 선박·항만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선박등”이라 한다)에 출입하여 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점검 7일전까지 점검자, 점검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국제항해선박소유자, 항만시설소유자, 대행기관 및 보안교육기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의 항해일정 등에 따라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보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인하여 제3항에 따른 점검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보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 ⑤ 제3항에 따른 점검을 하는 보안감독관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해당 선박등에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개정 2020. 2. 18.>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선박등을 점검한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보안을 유지하는 데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선박등에 대하여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점검을 관계 국가보안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 ⑧ 제1항에 따른 보안감독관의 자격·지정·운영 및 점검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20. 2. 18.>

[제목개정 2020. 2. 18.]

- 제42조(항만시설보안료)**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제31조 및 제31조의2에 따른 경비·검색인력 및 보안시설·장비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항만시설보안료”라 한다)을 해당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2018. 4. 17.>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20. 2. 18.>
- ③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요율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하려는 징수요율이 제2항에 따른 징수요율의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2. 18.>
- ⑤ 「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해상여객운송사업 및 해운대리점업 또는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을 하는 자(이하 “해상화물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는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항만시설보안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납부할 수 있다.<신설 2020. 2. 18.>

- ⑥ 항만시설소유자는 제5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자등이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항만 시설보안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항만시설보안료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8.>
- ⑦ 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의 기준과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2. 18.>

제43조(수수료) ① 제10조제3항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제11조에 따른 선박보안심사, 임시선박보안심사 및 특별선박보안심사, 제25조제3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승인 및 제26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심사,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및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② 제38조에 따라 대행기관이 보안심사를 대행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대행기관이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대행기관이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및 요율 등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45조(재정 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3조의2에 따른 보안의 확보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2018. 4. 17., 2024. 1. 23.>

제4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 12. 8.>

1. 제30조의5에 따라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및 점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
 2. 제30조의6에 따라 보안검색장비 성능시험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시험기관의 임직원
 3.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비·검색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임직원
 4. 제38조에 따라 보안심사 업무 등을 대행하는 대행기관의 임직원
- [전문개정 2016. 12. 2.]

제5장 벌칙

제47조(벌칙) 제3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항만시설이나 항만 내의 선박에 위법하게 위해물품을 반입·은닉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2. 18.>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2020. 2. 18.>

1. 거짓이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를 교부받은 자
2. 제14조를 위반하여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을 비치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을 교부받은 자
4. 제29조를 위반하여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을 비치한 항만시설을 운영한 자
- 4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제3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에 따른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7. 제41조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2018. 4. 17., 2020. 2. 18.>

1. 제6조제5항에 따른 세부적인 보안조치사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안조치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30조의2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제1항에 따른 경비·검색인력 및 보안시설·장비의 확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3의2. 제31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해상도 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4. 제3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검문검색 및 지시 등에 불응한 자
5. 제41조제2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6. 제41조제3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42조제3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변경된 요율을 포함한다)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한 자

제50조(벌칙의 적용) ①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적용할 벌칙은 그 항만시설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중 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국제항해선박의 소유자가 관리자를 둔 때에는 이를 관리자에게, 국제항해선박의 운영자가 그 소유자·관리자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때에는 이를 운영자에게 각각 적용한다.

③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중 항만시설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항만시설의 소유자가 관리자를 둔 때에는 이를 관리자에게, 항만시설의 운영자가 그 소유자·관리자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때에는 이를 운영자에게 각각 적용한다.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4. 1.]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12. 8.>

1. 제30조의3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2. 제30조의3에 따른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위반한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4. 17., 2020. 2. 18., 2020. 12. 8., 2024. 1. 23.>

1. 제7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총괄보안책임자로 지정한 자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제4항에 따른 총괄보안책임자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8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선박보안책임자로 임명한 자
5.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선박보안평가의 결과를 주된 사무소에 보관하지 아니한 자
6.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보안계획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7.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원본을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8.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보안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자
9.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이력기록부를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10.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이력기록부를 다시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1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국적 변경의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1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보안경보장치 등을 설치하거나 구비하지 아니한 자
13.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14.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항만시설보안책임자로 지정한 자
15.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만시설보안계획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17. 삭제<2024. 1. 23.>
18.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만시설보안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자
- 18의2.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19.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보안사건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항만시설보안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20. 제3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출입절차 없이 무단으로 출입한 자
21. 제3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항만시설 내 촬영이 제한되는 구역에서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촬영을 한 자
- 21의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촬영한 결과물을 발간 또는 복제하거나 배포한 자(재배포한 자를 포함한다)
- 21의3. 제3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비행승인 없이 항만시설 내 구역에서 드론을 조종한 자
22.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적격한 자를 내부보안심사자로 지정하거나 내부보안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안교육 및 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시행하지 아니한 자
24.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보안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5.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적인 합동보안훈련에 참여한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26. 제41조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이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12. 8.>
- ④ 삭제<2009. 4. 1.>
- ⑤ 삭제<2009. 4. 1.>

부칙 <제8618호, 2007. 8. 3.>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보안등급의 설정·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설정·조정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등급은 제6조에 따라 설정·조정된 것으로 본다.
- 제3조** (보안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지정된 총괄보안책임자, 선박보안책임자 및 항만시설보안책임자는 제7조·제

8조 및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선박보안계획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관계 국가기관으로부터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선박보안계획서와 항만시설보안계획서, 관계 국가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국제선박보안증서·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및 항만시설적합확인서는 그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교부받은 선박이력기록부는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보안교육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지정된 보안교육기관은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제40조제3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지정된 보안교육기관에서 보안교육을 이수한 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안교육기관에서 보안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 、 <생략> 、 、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35> 까지 생략

<636>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제7항 본문·단서,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단서 및 제6항, 제7조제2항 전단 및 제4항, 제10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전단·후단,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0항 본문,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23조제2항 전단 및 제4항,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25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전단,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제2항,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34조제1항, 제35조제2항 전단,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제39조제4항, 제4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 제41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제42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43조제3항 전단, 제44조 및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제7항 본문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제6조제3항 및 제5항, 제7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제5항, 제11조제1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 단서,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제4항, 제17조제2항 및 제5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단서 및 제4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5항·제8항·제9항 및 제1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5항, 제2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24조제4항, 제2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제5항,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 단서,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34조제2항제5호, 제35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36조제2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4항, 제39조제3항 전단 및 제4항·제5항, 제40조제5항, 제41조제6항, 제42조제2항 전단 및 제43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63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611호, 2009. 4. 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73호, 2009. 6. 9.> (항만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⑧ 부터 2&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1578호, 2012. 1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원대피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한 선원대피처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원대피처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3>까지 생략

<564>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6조제3항·제5항,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9조제2항·제3항,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1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 단서,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2항·제5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제8항·제9항·제1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5항, 제2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24조제4항, 제2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29조 단서,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제1항제3호·제4호, 제34조제2항제5호, 제3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2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4항, 제39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40조제5항, 제41조제6항, 제42조제2항 전단 및 제43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본문 및 단서,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7조제2항·제3항, 제19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같은 조 제10항 본문, 제20조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5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2항, 제32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 제35조제2항 전단,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9조제4항, 제4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1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42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3조제3항 전단, 제44조 및 제52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법률 제11578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7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6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844호, 2014. 11. 1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6>까지 생략

<227>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관세청·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관세청 및 경찰청”으로 한다.

제19조제5항 및 제44조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28>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347호, 2016. 12.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안검색업무 등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항만시설소유자가 종전의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안검색업무를 위탁하거나 종전의 제31조제1항에 따른 경비·검색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비·검색업무를 위탁한 경우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항만시설소유자로부터 위탁받은 보안검색업무 또는 경비·검색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칙 <제14504호, 2016. 12. 27.>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선원들의 안전을 위한 선원대피처와 제9조에 따른”을 “제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6항 중 “및 선원대피처의 설치대상 선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으로 한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6>까지 생략

<237>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국민안전처·관세청 및 경찰청”을 “관세청·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9조제5항 및 제44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3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603호, 2018. 4. 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21호, 2020. 2.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40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41조, 제48조제7호, 제49조제5호·제6호 및 제52조제1항제2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15호, 2020. 12.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에 대한 경과조치)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제3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보안검색장비 중 제작국가 등의 보안검색장비 인증 공인기관으로부터 성능을 인증받은 보안검색장비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제3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성능 인증을 받고 생산 중인 보안검색장비가 각기 다른 제작사의 장비로서 종류별로 2종 이상이 인증되기 이전까지는 제작국가 등의 보안검색장비 인증 공인기관으로부터 성능을 인증받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125호, 2024. 1.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 효력정지 및 항만시설보안심사 불합격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 ① 제28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효력정지는 이 법 시행 이후 갯신보안심사 및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에 불합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8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심사 불합격처분의 유예는 이 법 시행 이후 항만시설보안심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1. 12.] [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051 - 773 - 5852, 5851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 051 - 773 - 5778, 5780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항만보안계획의 수립 등) 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1. 법 제5조제3항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에 관한 사항 또는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관할 구역 항만의 항만시설보안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에 관한 사항
2.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인한 해양항만관서의 조직 또는 관할 구역 변경에 따른 법 제5조제1항의 국가항만보안계획(이하 “국가항만보안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5조제5항의 지역항만보안계획(이하 “지역항만보안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법 제5조제8항 단서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생각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국가항만보안계획 :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안위원회의 심의
2. 지역항만보안계획 :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및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의 협의

제3조(지역항만보안계획의 세부내용 등) ① 법 제5조제9항에 따른 지역항만보안계획의 세부내용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구역 항만의 보안에 관한 기본방침
2. 관할 구역 항만의 보안에 관한 중·장기 추진방향
3. 관할 구역 항만의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관련 행정기관의 역할
4. 관할 구역 항만의 보안에 관한 항만시설소유자의 역할
5. 관할 구역 항만에서의 보안시설·장비의 설치 및 경비·검색인력의 배치
6. 관할 구역 항만의 항만시설보안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계획
7. 관할 구역 항만에서의 보안사건에 대한 대비·대응조치
8. 그 밖에 관할 구역 항만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조제9항에 따라 지역항만보안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 필요하면 항만시설소유자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7. 5. 29.>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수립된 지역항만보안계획을 관할 구역 국가보안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7. 5. 29.>

제4조(보안등급의 설정·조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안등급을 설정하거나 조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보안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의 구체성, 긴급성 및 신뢰성
2. 보안사건이 일어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

② 제1항에 따른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보안 1등급 :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으로 일상적인 최소한의 보안조치가 유지되어야 하는 평상수준
2. 보안 2등급 :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에 보안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증대되어 일정기간 강화된 보안조치가 유지되어야 하는 경계수준
3. 보안 3등급 :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에 보안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뚜렷하거나 임박한 상황이어서 일정기간 최상의 보안조치가 유지되어야 하는 비상수준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는 선박의 종류·항로 또는 해역별로 그 운항 특성을 고려하여 보안등급을 설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으며,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항만별 또는 항만시설 단위별로 그 기능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안등급을 설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5조(국가보안기관 협의 대상 선박)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1. 14.>

1.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라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된 선박
2.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제항해선박 중 여객선
3. 폭발물 또는 무기류 등 국가안보상 필요한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으로서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협의를 요청한 선박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0조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이하 “선박보안계획서”라 한다)를 승인할 때 국가보안기관의 장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선박

제6조(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의 유효기간)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로 한다. 다만,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만료 전에 국제선박보안증서가 발급되면 그 때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중간보안심사를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간보안심사 기간에 받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국제선박보안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까지

2. 중간보안심사를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간보안심사 기간에 받았으나 불합격하여 그 기간을 지난 경우 :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효력이 정지된 후 중간보안심사에 합격한 날부터 해당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3. 중간보안심사를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간보안심사 기간 전에 받은 경우 : 그 중간보안심사를 마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4. 유효기간 중 선박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선박의 매매 등으로 선박의 국적이 변경된 경우 또는 선박의 운항·관리 책임이 다른 회사로 인계·인수된 경우 : 해당 국제선박보안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선박의 등록이 말소된 날, 선박의 매매 등으로 선박의 국적이 변경된 날 또는 선박의 운항·관리 책임이 다른 회사로 인계·인수된 날의 전날까지
 5. 갱신보안심사를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갱신보안심사 기간 전에 마친 경우 : 그 갱신보안심사 직전에 발급받은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국제선박보안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갱신보안심사에 따라 새로 국제선박보안증서를 받은 날의 전날까지
 6. 갱신보안심사를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갱신보안심사 기간 후에 마친 경우 : 그 갱신보안심사에 따라 새로 발급받은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국제선박보안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그 갱신보안심사 직전에 발급받은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 및 연장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검사를 받기로 계획된 항만을 관할하는 국가의 내란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선박보안심사를 받기로 예정된 항만에 기항할 수 없는 경우 : 3개월 이내
 2. 국제선박보안증서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외국에서 갱신보안심사를 마쳤으나 국제항해선박의 운항일정 등으로 보안심사를 마친 항만에서 새로운 국제선박보안증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 5개월 이내
- ④ 제3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7조(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 대한 시정·보완 조치 또는 항해정지명령)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안관리체제에 대하여 점검한 국제항해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게 시정·보완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5. 29.>

1. 보안사건 발생의 예방에 필요한 보안장비가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정비가 필요한 경우
 2. 보안사건 발생의 예방을 위하여 선내 보안임무 근무자에 대한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9조에 따른 선박보안평가의 결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선박보안계획서의 시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안관리체제에 대하여 점검한 국제항해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 대하여 항해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5. 29.>

1.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자나 선박의 선원이 선박 보안관리체제와 보안 상황에 대한 이해가 현저하게 부족하여 해당 국제항해선박의 보안관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제항해선박에 갖추어 두도록 되어 있는 국제선박보안증서, 선박이력기록부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였거나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3. 국제항해선박의 보안 관련 장비가 갖추어지지 아니하였거나 보안관리체제가 국제협약 또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외국의 항만국통제 시 출항정지, 입항거부 또는 추방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게 시정·보완 조치 또는 항해정지를 명하려면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5. 29.>

제8조(항만시설보안평가 협의)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한 결과 국가정보원장이 요청하면 「보안업무규정」 제35조에 따른 보안측정의 실시와 연계하여 항만시설보안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1. 14.>

제9조(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3항 후단에 따라 협의한 결과 국가정보원장이 요청하면 「보안업무규정」 제38조에 따른 보안사고 조사와 연계하여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6. 9., 2020. 8. 19.>

제10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 등의 유효기간)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5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른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6개월로 한다. <개정 2020. 8. 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0. 8. 19.>

1.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에 항만시설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항만시설소유자의 변경일에 해당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2.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중에 항만시설적합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항만시설적합확인서가 발급된 때에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3.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간보안심사를 받지 않고 그 심사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적합한 항만시설보안심사에 합격될 때까지 해당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그 효력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③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천재지변 또는 보안사건이 발생하는 등 중요한 보안 상황의 변경으로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갱신보안심사 기간 중에 갱신보안심사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8. 19.>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로부터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으면 그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9.>

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8. 19.>

⑤ 제3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연장신청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8. 19.>

[제목개정 2020. 8. 19.]

제10조의2(인증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의5에 따라 법 제30조의3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및 점검 업무를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선급법인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2021. 11. 23.]

제11조(항만시설의 출입절차 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3호의 지역을 출입하려는 사람은 항만시설소유자가 발급하는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20. 8. 19.>

② 제1항의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출입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발급받은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출입증은 해당 지역 출입 시 경비·검색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나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가슴에 달 것
3. 출입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출입증을 발급한 자에게 신고하고 분실 경위를 밝힐 것
4. 출입증 발급 시 허용한 지역에만 출입할 것
5. 출입증은 전출·퇴직 또는 발급받은 목적의 달성 등으로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급한 자에게 반납할 것
6.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검문·검색 등 통제에 따를 것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출입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과 출입자의 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1조의2(항만시설 촬영결과물의 발간·복제 또는 배포 행위의 허가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책임자(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촬영결과물(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 내외부에서 촬영한 결과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간 또는 복제하거나 배포(재배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발간·복제 또는 배포하려는 촬영결과물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 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안의 확보·유지 및 보안검색에 필요한 경비·검색인력에 관한 사항
 - 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안의 확보·유지 및 보안검색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항만시설의 보안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해당 촬영결과물을 발간 또는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로 인하여 해당 항만시설에 보안사건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을 것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안보안책임자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와 발간·복제 또는 배포하려는 촬영결과물을 해당 항만시설보안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항만시설보안책임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23.]

[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24. 7. 23.>]

제11조의3(무기를 반입·소지할 수 있는 업무) 법 제33조제3항에서 “항만시설의 경비·검색 업무, 경호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4. 7. 23.>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요 인사(人士) 경호
2.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원의 경비
3. 항만시설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및 「경비업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특수경비원의 경비·검색
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경호
5. 외국정부의 중요 인물을 경호하는 해당국 정부의 경호

[본조신설 2020. 8. 19.]

[제1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3은 제11조의4로 이동 <2024. 7. 23.>]

제11조의4(항만시설 등에 반입·소지할 수 있는 무기)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기”란 다음 각 호의 무기를 말한다. <개정 2024. 7. 23.>

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권총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분사기
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에 따른 전자충격기
4. 국제협약 또는 외국정부와의 합의서에 따라 휴대가 허용되는 무기

[본조신설 2020. 8. 19.]

[제11조의3에서 이동 <2024. 7. 23.>]

제11조의5(드론 비행승인의 적용특례) 법 제33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2.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3.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5.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6.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7.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8.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9. 「항로표지법」 제41조에 따른 한국항로표지기술원
10.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11.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회
12.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13. 그 밖에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을 법 제3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할 필요가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본조신설 2024. 7. 23.]

제12조(보안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보안위원회(이하 “보안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해운물류국장·해사안전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법무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관세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1명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6. 25., 2010. 3. 1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1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안위원회에 선박이나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그 밖에 보안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안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제13조(협정의 체결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심사 및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에 관한 보안심사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와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대행업무의 범위
2. 대행기간
3. 그 밖에 보안업무 등의 대행에 필요한 조건

제14조(보안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의2(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방법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이하

“항만시설보안료”라 한다)의 징수요율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31조의2에 따라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을 확보·유지하고 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검색인력 및 보안시설·장비의 확보 등에 직접 지출한 비용에 보안시설·장비의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7. 5. 29., 2018. 10. 2.>

② 항만시설보안료는 해당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국제항해선박소유자, 여객 및 화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6. 9.>

1. 국제항해선박소유자: 선박의 총톤수(톤당)

2. 여객: 1명 기준

3. 화주: 화물의 수량(톤, TEU, BARREL당)

③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시설보안료를 해당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국제항해선박소유자, 여객 및 화주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징수하거나 항만시설소유자와 국제항해선박소유자 간 협의를 통하여 국제항해선박소유자로부터 일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하려는 경우 선박에 대한 항만시설보안료는 선박료에, 여객에 대한 항만시설보안료는 운임 또는 여객터미널 이용료에, 화물에 대한 항만시설보안료는 하역요금 또는 화물료에 포함하여 통합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5. 6. 9., 2017. 5. 29.>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이용자에 미치는 부담 및 항만시설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에 관한 기준, 항만시설보안료 산정 시 고려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5. 29.>

[본조신설 2010. 8. 11.]

제15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2. 29., 2010. 8. 11., 2013. 3. 23., 2014. 11. 19., 2017. 5. 29., 2017. 7. 26., 2020. 8. 19., 2024. 7. 23.>

1.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보안조치의 지시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총괄보안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통보의 접수

3.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총괄보안책임자 변경 명령

4. 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및 관계 국가보안기관과의 협의

5.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박보안심사

6.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의 교부, 심사결과의 표기 및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의 교부

7.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의 유효기간의 연장

8.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박이력기록부의 교부와 변경 교부

9.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제항해선박소유자가 하는 국제항해선박 국적변경 통보의 수리 및 해당 국가의 해운관청에 대한 통보

10. 법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항만국통제와 이에 따른 출항정지·이동제한·시정요구·추방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명령

11. 법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선박보안정보 통보의 접수 및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통보
12.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동제한·시정요구·선박점검 또는 입항거부 등의 조치 명령
13. 법 제19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통지 및 통보
14. 법 제19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조사·통보 및 통보시한의 연장
15.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정·보완조치 또는 항해정지명령
16.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의 접수, 재심사 및 재심사 결과의 통보
17.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 지정의 통보 및 변경통보의 접수
18.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변경 명령
19.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만시설보안평가,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의 협의, 항만시설보안평가 결과의 통보 및 재평가
20.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승인, 변경 승인 및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의 협의
21. 법 제26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심사,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 및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의 협의
22. 법 제27조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교부 및 심사 결과의 표기
23.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유효기간의 연장
- 23의2.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른 갱신보안심사, 중간보안심사 및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에 대한 불합격처분의 유예
- 23의3. 법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만시설의 경비·검색업무의 수탁업체 지정, 지정취소 및 청문
24. 법 제32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정보 보고의 접수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정보 제공의 요청
- 24의2.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무기의 반입·소지 허가
25.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안합의서 작성·교환의 권고
26. 법 제37조에 따른 보안심사관의 임명
27.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명령이나 자료 제출의 요구
28. 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선박 등에 대한 출입, 점검 및 점검계획의 통보
29.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명령
30.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합동 점검
- 30의2.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에 대한 승인 및 변경승인
31.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11. 23.>

[전문개정 2011. 4. 4.]

부칙 <제20586호,2008. 1. 31.>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22호,2008. 2. 29.>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2& 까지 생략

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제5조제4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2항, 제3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 전단, 제3항 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라 한다.

제6조제4항, 제10조제4항 및 제16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해양수산관서”를 “해양항만관서”로 한다.

제3조제2항, 제3항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2(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1556호,2009. 6.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75호,2010. 3. 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3% 까지 생략

3^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 보건복지가족부 ” 를 “ 보건복지부 ” 로 한다.

3&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2330호, 2010. 8.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29호, 2011. 4. 4.>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용적률 산정에 관한 적용례) 「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4443호, 2013. 3. 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9>까지 생략

<110>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4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2항·제3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5항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 국토해양부장관 ” 을 각각 “ 해양수산부장관 ” 으로 한다.

제6조제4항 및 제10조제4항 중 “ 국토해양부령 ” 을 각각 “ 해양수산부령 ” 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 국토해양부의 해사안전정책관·물류정책관 ” 을 “ 해양수산부의 해운물류국장·해사안전국장 ” 으로 한다.

<111>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5751호,2014. 11. 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9>까지 생략

<380>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관세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관세청 및 경찰청”으로 한다.

제15조제11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38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310호,2015. 6.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80호,2017. 5. 29.>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11호,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0>까지 생략

<311>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 관세청 및 경찰청 소속의 고위공무원”을 “관세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11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31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9214호,2018. 10. 2.>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06호,2019. 10. 8.> (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30352호,2020. 1. 14.> (보안업무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보호장비로 ”를 “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라 국가보호장비로 ”로 한다.

제8조 중 “ 「보안업무규정」 제37조 ”를 “ 「보안업무규정」 제35조 ”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30958호,2020. 8. 19.>

이 영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7호부터 제30호까지 및 별표 2 제2호 퍼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51호,2021. 11. 23.>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52호,2024. 7.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국토정보공사의 근거 법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부터 2025년 2월 20일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근거 법률에 관하여는 제11조의5제3호의 개정규정 중 “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을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 ”로 본다.

부칙 <제34988호, 2024. 11. 12.>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11. 12.>

보안교육기관의 지정요건(제14조 관련)

| 구분 | 지정요건 |
|------------|---|
| 시설 기준 | <p>가. 해당 교육기관의 주된 강의실이나 실습실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p> <p>나. 학급당 정원은 60명 이내일 것</p> |
| 교수 자격 및 인원 | <p>가. 교수요원은 법 제37조에 따른 보안심사관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p> <p>나. 교육기관당 가목의 요건을 갖춘 교수요원을 2명 이상 확보할 것</p>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7. 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채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총괄보안책임자로 지정한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1호 | 150 | 200 | 300 |
| 나.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2호 | 90 | 120 | 180 |
| 다.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총괄보안책임자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3호 | 150 | 200 | 300 |
| 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선박보안책임자로 | 법 제52조 제2항제4호 | 150 | 200 | 300 |

| | | | | |
|---|----------------|-----|-----|-----|
| 임명한 경우 | | | | |
| 마.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박보안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선박보안평가의 결과를 주된 사무소에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5호 | 120 | 160 | 240 |
| 바.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보안계획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6호 | 120 | 160 | 240 |
| 사. 법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원본을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7호 | 120 | 160 | 240 |
| 아.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보안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8호 | 90 | 120 | 180 |
| 자.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이력기록부를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9호 | 120 | 160 | 240 |
| 차.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이력기록부를 다시 교부받지 않거나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10호 | 120 | 160 | 240 |
| 카. 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국제 변경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11호 | 90 | 120 | 180 |
| 타.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보안경보장치 등을 설치하거나 구비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12호 | 150 | 200 | 300 |
| 파.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13호 | 150 | 200 | 300 |
| 하.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항만시설보안책임자로 지정한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14호 | 150 | 200 | 300 |
| 거.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15호 | 90 | 120 | 180 |
| 너.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만시설보안계획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16호 | 120 | 160 | 240 |
| 더. 삭제 <2024. 7. 23.> | | | | |

| | | | | |
|--|------------------|-----|-----|-------|
| 러.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만시설보안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18호 | 120 | 160 | 240 |
| 머. 법 제30조의3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1항제1호 | 500 | 750 | 1,000 |
| 버. 법 제30조의3에 따른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이 위반한 경우 | 법 제52조 제1항제2호 | 500 | 750 | 1,000 |
| 서. 법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18호의2 | 120 | 160 | 240 |
| 어.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보안사건을 보고하지 않거나 항만시설보안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19호 | 120 | 160 | 240 |
| 저. 법 제3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출입절차 없이 무단으로 출입한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20호 | 150 | 200 | 300 |
| 처. 법 제3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항만시설 내 촬영이 제한되는 구역에서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촬영을 한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21호 | 120 | 160 | 240 |
| 커.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촬영한 결과물을 발간 또는 복제하거나 배포한 경우(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 | 법 제52조 제2항제21호의2 | 150 | 200 | 300 |
| 터. 법 제3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비행승인 없이 항만시설 내 구역에서 드론을 조종한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21호의3 | 150 | 200 | 300 |
| 퍼.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적격한 자를 내부보안심사자로 지정하거나 내부보안심사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22호 | 120 | 160 | 240 |
| 허. 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안교육 및 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 법 제52조 제2항제23호 | 150 | 200 | 300 |

| | | | | |
|--|----------------|-----|-----|-----|
| 않거나 시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고. 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보안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24호 | 150 | 200 | 300 |
| 노. 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적인 합동보안훈련에 참여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25호 | 90 | 120 | 180 |
| 도.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이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26호 | 150 | 200 | 300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3. 25.] [해양수산부령 제790호, 2026. 3. 25.,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051 - 773 - 5852, 5851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 051 - 773 - 5778, 578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만시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외의 시설로서 국제항해선박이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09. 12. 14., 2013. 3. 24., 2017. 6. 2., 2024. 7. 24.>

1. 선박을 수리하거나 건조하는 조선소의 선박계류시설
2. 석유 비축기지, 액화천연가스 생산기지 또는 화력발전소의 선박계류시설
3. 「선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외국 국적선박이 기항하는 불개항장의 선박계류시설

제3조(보안등급 설정·조정 통보 등)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보안등급 설정·조정의 통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거쳐서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되, 서면 통보에 추가하여 전화·전자우편·팩스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7. 6. 2.>

② 제1항에 따라 보안등급 설정·조정의 통보를 받은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7조에 따른 총괄보안책임자(이하 “총괄보안책임자”라 한다), 법 제8조에 따른 선박보안책임자(이하 “선박보안책임자”라 한다)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이하 “항만시설보안책임자”라 한다)로 하여금 설정·조정된 보안등급을 국제항해선박이나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업무의 수행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보안등급별로 국제항해선박 또는 항만시설에서 국제항해선박소유자와 항만시설소유자가 지켜야 하는 보안등급별 세부 보안조치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2장 국제항해선박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제4조(총괄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지식 등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총괄보안책임자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통보는 별표 2에 따른 총괄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총괄보안책임자 지정·변경지정 통보서로 한다.

③ 법 제7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1. 선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사건 등 보안상 위협의 종류별 대응방안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이하 “선박보안계획서”라 한다)의 시행 및 보완
3. 법 제36조에 따른 내부보안심사(이하 “내부보안심사”라 한다) 시 발견된 보안상 결함의 시정
4. 국제항해선박 소속 회사의 선박보안에 관한 관심 제고 및 선박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
5. 보안등급이 설정·조정된 경우의 해당 보안등급과 관련한 정보의 선박보안책임자에 대한 전파
6. 국제항해선박의 선장에 대한 선원 고용, 운항일정 및 용선계약에 관한 정보의 제공
7. 선박보안계획서에 다음 각 목에 관한 선장의 권한과 책임의 규정에 관한 사항
 - 가. 국제항해선박의 안전과 보안에 관한 의사결정 및 대응조치
 - 나.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
8. 외국 항만의 보안등급 조정, 보안사건 및 국제항해선박·선원에 대한 보안상 위협 등과 관련한 주요 정보의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보고
9. 그 밖에 국제항해선박과 소속 회사의 보안에 관한 업무

제5조(선박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지식 등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②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1. 화물이나 선용품의 하역에 관한 항만시설보안책임자와의 협의·조정
2. 선원에 대한 보안교육 등 국제항해선박 내 보안활동의 시행
3. 총괄보안책임자 및 관련 항만시설보안책임자와의 선박보안계획서의 시행에 관한 협의·조정
4. 선박보안계획서의 이행·보완·관리·보안 유지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박보안기록부(이하 “선박보안기록부”라 한다)의 작성·관리
5. 보안장비의 운용·관리

6. 선박보안계획서, 국제선박보안증서, 선박이력기록부 등 서류의 비치·관리
7. 입항하려는 외국 항만의 항만당국에 대한 국제항해선박 보안등급 정보의 제공, 국제항해선박과 해당 항만의 보안등급이 다른 경우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보안등급의 조정 및 입항하려는 해당 항만의 보안등급에 관한 정보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총괄보안책임자에 대한 보고
8. 그 밖에 해당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에 관한 업무

제6조(선박보안평가 등) 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보안평가(이하 “선박보안평가”라 한다)를 마치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보안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박보안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입제한구역의 설정 및 제한구역에 대한 일반인의 출입 통제
 2. 국제항해선박에 승선하려는 자에 대한 신원확인 절차 마련 여부
 3. 선박의 갑판구역과 선박 주변 육상구역에 대한 감시 대책
 4. 국제항해선박에 근무하는 자와 승선하는 자가 휴대하거나 위탁하는 수하물에 대한 통제 방법
 5. 화물의 하역절차 및 선용품(船用品)의 인수절차
 6. 국제항해선박의 통신·보안장비와 정보의 관리
 7. 선박보안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 보안활동
 8. 국제항해선박에서의 보안상 위협의 확인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 및 조치
 9.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시설·장비·인력 및 보안의 취약요인 확인과 대응절차의 수립·시행
-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선박보안평가는 국제항해선박과 관련된 문서를 확인하는 문서보안평가와 국제항해선박에서의 보안활동을 확인하는 현장보안평가로 할 수 있다.

제7조(선박보안계획서의 세부내용)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박보안계획서에는 별표 1에 따른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의 보안등급별 세부 보안조치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 또는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6. 30.>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한 제한구역의 설정,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통제 및 무단출입 금지의 표시 등 제한구역의 관리
 - 가. 선박의 기관실 중 주기관, 발전기 및 보일러 등 주요 기관설비가 있는 구역과 그 기관설비에 대한 제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구역
 - 나. 보안장비와 운항·조명을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구역
 - 다. 통풍이나 공기조화장치가 설치된 구역
 - 라. 식수탱크, 펌프 또는 매니폴드(여러 개의 가지관)의 출입구가 있는 구역
 - 마. 위험물과 유해물질을 보관·관리하는 구역
 - 바. 화물펌프와 화물펌프 제어장치가 있는 구역(액체 화물을 운반하는 국제항해선박만 해당한다)

사. 화물과 선용품이 보관된 구역

아. 승무원이 거주하는 구역

자. 그 밖에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을 위하여 총괄보안책임자가 지정한 구역

2. 선박항만연계활동 또는 선박상호활동을 해칠 수 있는 보안상의 위협이나 침해에 대한 대응 절차와 대피절차
3. 보안 3등급에서 정부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
4. 내부보안심사 절차
5. 선박보안계획서의 시행을 위한 교육·훈련
6. 선박보안책임자와 총괄보안책임자의 성명과 연락처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선박보안경보장치(이하 “선박보안경보장치”라 한다) 작동설비의 위치 및 관리
8. 보안장비의 유지·관리
9.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보안합의서(이하 “보안합의서”라 한다)의 작성·시행
10. 그 밖에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에 관한 법령과 국제협약의 이행

제8조(선박보안계획서 중 중요사항의 변경 등) 법 제10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개정 2008. 3. 14., 2013. 3. 24.>

제9조(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변경승인 절차)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선박보안계획서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7. 6. 2.>

1. 선박보안계획서 승인 신청의 경우

가. 선박보안평가 결과서 1부

나. 선박보안계획서 2부

2. 선박보안계획서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가. 변경하려는 선박보안계획서 2부

나.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의 선박보안계획서는 그 선박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용언어가 영어·불어 또는 스페인어가 아닌 경우에는 영어·불어 또는 스페인어 중 하나의 언어로 병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선박보안계획서는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제10조(갱신보안심사 및 중간보안심사의 시기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선박보안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받아야 한다.

1. 갱신보안심사 :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2. 중간보안심사 :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이 시작된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간

② 법 제11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개정 2008. 3. 14., 2013. 3. 24.>

1. 새로 건조된 선박을 국제선박보안증서가 교부되기 전에 국제항해에 이용하려는 때

2.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국제항해선박을 국제선박보안증서가 교부되기 전에 국제항해에 이용하려는 때

3. 외국 국제항해선박의 국적이 대한민국으로 변경된 때

4. 국제항해선박소유자가 변경된 때

③ 법 제11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를 말한다.<개정 2008. 3. 14., 2013. 3. 24.>

1. 국제항해선박이 보안사건으로 외국의 항만당국에 의하여 출항정지 또는 입항거부를 당하거나 외국의 항만으로부터 추방된 때

2. 외국의 항만당국이 보안관리체제의 중대한 결함을 지적하여 통보한 때

3. 그 밖에 국제항해선박 보안관리체제의 중대한 결함에 대한 신뢰할 만한 신고가 있는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항해선박의 보안관리체제에 대하여 보안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1조(선박보안심사 및 임시선박보안심사의 세부내용 및 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선박보안심사(이하 “선박보안심사”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보안심사(이하 “임시선박보안심사”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선박보안심사(이하 “특별선박보안심사”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② 선박보안심사 또는 임시선박보안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최초·갱신·중간·임시선박보안심사 신청서를 선적항 또는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7. 6. 2.>

1. 최초보안심사 :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사본

2. 갱신보안심사 또는 중간보안심사 : 국제선박보안증서 사본

3. 임시선박보안심사 : 선박보안평가 결과서 사본과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을 신청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특별선박보안심사를 하려면 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게 특별선박보안심사의 사유·방법·일시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필요하거나 미리 알리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특별선박보안심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 3. 14., 2017. 6. 2.>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선박보안심사나 임시선박보안심사의 신청을 받더라도 선박수리 등의 사유로 원활한 선박보안심사나 임시선박보안심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심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 3. 14., 2017. 6. 2.>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선박보안심사 또는 임시선박보안심사나 제3항에 따른 특별선박보안심사를 하는 경우 선박보안책임자가 선박보안심사 과정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선박보안심사에 참여하는 자가 없거나 국제항해선박소유자가 선박보안심사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선박보안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7. 6. 2.>

제12조(국제선박보안증서의 교부 등)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교부하는 국제선박보안증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간보안심사 및 특별선박보안심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1. 심사자 서명
2. 심사장소
3. 합격일자
4. 심사기관장의 직인

③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또는 증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제선박보안증서·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재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7. 6. 2.>

1.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가.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 사유서

나. 국제선박보안증서가 훼손된 경우 그 훼손된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의 원본. 다만, 선박이 국외에서 운항 중이어서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되,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가.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원본. 다만, 선박이 국외에서 운항 중이어서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되,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12조의2(전자증서의 발급) 제12조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6. 30.]

제13조(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① 법 제13조제2항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원본이나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선박보안증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7. 6. 2.>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유효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그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7. 6. 2.>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국제선박보안증서에 연장의 뜻을 표기하여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8. 10. 17.>

제14조(국제선박보안증서등 미소지 선박의 항해 허용) 법 제14조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3. 6. 24.>

1.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로서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검사를 받거나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기 위하여 시운전을 하는 경우
2. 국제항해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박을 수리하기 위하여 왕복 1회만 항해하는 경우
3. 국제항해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박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로 1회만 항해하는 경우

제15조(선박보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 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선박보안기록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39조에 따른 보안교육·훈련
2. 국제항해선박을 운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보안사건이나 보안침해
3. 국제항해선박의 보안등급
4. 국제항해선박의 보안과 직접 관련되는 통신기록
5. 내부보안심사 결과와 조치
6. 선박보안평가서와 선박보안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
7. 선박보안경보장치 등 보안장비의 유지, 교정 및 시험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선박보안기록부는 그 선박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언어가 영어·불어 또는 스페인어가 아닌 경우에는 영어·불어 또는 스페인어 중 하나의 언어로 병기하여야 한다.

③ 선박보안기록부는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선박보안기록부는 무단으로 열람, 변경, 삭제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국제항해선박에는 최근 3년간의 선박보안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선박보안기록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6조(선박이력기록부의 교부 신청 등) 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선박이력기록부(이하 “선박이력기록부”라 한다)를 교부받으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선박이력기록부 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1. 4. 11.,

2012. 1. 6., 2017. 6. 2., 2024. 2. 5.>

1. 삭제<2011. 4. 11.>
2. 「선박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제총톤수증서 사본
3. 「해상교통안전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와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와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사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의 사본
5. 과거의 모든 선박이력기록부 사본(국제항해선박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 ②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선박이력기록부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또는 해당 선박이력기록부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선박이력기록부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3. 6. 24., 2017. 6. 2.>

1.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가. 선박이력기록부의 분실 또는 훼손 사유서

나. 훼손된 경우 그 훼손된 선박이력기록부 원본. 다만, 선박이 국외에서 운항 중이어서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되,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가. 선박이력기록부 사본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소유자로부터 해당 선박의 국적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국제항해선박의 과거 선박이력기록부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국가의 해운관청에 국적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7. 6. 2.>

- ④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선박이력기록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⑤ 제4항에 따른 선박이력기록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신설 2026. 3. 25.>

제17조(보안정보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갖추어야 하는 선박보안정보장치에서 발신하는 신호(이하 “보안정보신호”라 한다)를 수신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1. 보안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전용 인터넷 서버
2. 수신되는 보안정보신호의 종류와 발신자에 따라 경보를 실제경보, 훈련경보 및 오류경보를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3. 실제경보를 수신한 경우 해당 보안정보신호를 국가보안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 보안정보신호전파시스템

②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선박보안경보장치의 성능요건과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14., 2009. 6. 26., 2013. 3. 24., 2013. 6. 24., 2021. 6. 30.>

1. 성능요건

가. 국제항해선박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을 것

나.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의 위협이나 침해 상황을 나타내는 보안경보신호를 발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수신국에 전송할 수 있을 것

다. 다른 선박에 보안경보신호가 송신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발신한 국제항해선박에서는 경보음이 울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작동해제 또는 재설정 시까지 선박보안경보장치의 작동이 중지되지 아니할 것

마. 선박보안경보장치에서 송신되는 보안경보신호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것

- (1) 국제해사기구 선박식별번호
- (2) 해상이동업무 식별번호
- (3) 국제항해선박명
- (4) 보안경보신호 발신 일시
- (5) 보안경보신호 발신 당시의 국제항해선박의 위치
- (6) 국제항해선박의 침로(針路: 선수 방향)
- (7) 국제항해선박의 속력
- (8) 보안경보신호의 종류

2. 설치장소

가. 다른 항해 장비로 성능에 지장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작동 위치는 항해 선교(船橋)와 그 밖의 1개 이상의 장소에 설치할 것

③ 삭제 <2017. 12. 28.>

제18조(선박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박식별번호(이하 “선박식별번호”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식별번호의 표시는 다른 표시와 구별되어 명확하게 보이도록 대비색으로 칠하고, 쉽게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음각 또는 양각의 방법으로 표시할 것

2. 제2항제1호에 따른 선박식별번호 글자의 높이는 2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선박식별번호 글자의 높이는 1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글자의 폭은 높이와 비례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선박식별번호는 국제항해선박의 외부와 내부에 표시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 6. 26., 2013. 6. 24.>

1. 선박의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가. 여객선 : 상공에서 볼 수 있는 갑판의 수평면

나. 여객선 외의 선박 : 다음 위치 중 잘 보이는 어느 한 곳

- (1) 선미

- (2) 선체 중앙부의 좌현 및 우현의 만재흘수선 상부
- (3) 선루(船樓)의 좌현과 우현
- (4) 선루의 전방면

2. 선박의 내부에 표시하는 경우

- 가. 유조선 등 액체화물운반선: 화물 펌프실 또는 기관구역의 횡격벽 중 접근이 가능한 곳 중 어느 한 곳
- 나. 그 밖의 선박: 기관구역의 횡격벽, 화물구역 안쪽 또는 차량을 전용으로 운반하는 화물구역이 있는 선박의 경우 차량전용 화물구역의 횡격벽 중 접근이 가능한 곳 중 어느 한 곳

제19조(항만국통제의 시행) ①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안책임자(이하 “보안책임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에 따른 보안담당자(이하 “보안담당자”라 한다)가 법 제3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선박보안관리체제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국제선박보안증서, 선박이력기록부 및 선박보안계획서 등 보안 관련 서류를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갖추어 둔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
 3. 선박보안경보장치를 갖추지 아니하였을 때
 4. 국제항해선박 보안관리체제의 중대한 결함에 대한 신뢰할 만한 신고를 받았을 때
 5.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선박보안정보(이하 “선박보안정보”라 한다)를 통보하지 아니하였을 때, 통보시한이 지난 후에 통보하였을 때 또는 거짓으로 통보하였을 때
 6. 대한민국 항만에 입항 예정인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 보안관리체제의 중대한 결함에 대하여 해당 국가의 해운관청으로부터 통보가 온 경우
 7. 그 밖에 국제항해선박이 보안에 관한 법령이나 국제협약을 위반한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해당 선박에 대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항만국통제”라 한다)를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7. 6. 2.>

제20조(선박보안정보의 통보 등) ① 법 제1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선박보안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14., 2017. 6. 2.>

1. 외국 국적 국제항해선박의 선박명, 국적, 선박 종류, 호출부호, 선박식별번호, 총톤수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
2. 입항하려는 항만 및 입항 예정시간
3. 해당 선박의 보안등급 및 유효한 국제선박보안증서의 비치 여부
4. 최근 기항한 10개 항만의 보안정보 및 해당 항만에서의 보안조치

5. 항해 중 발생한 보안사건 및 관련 보안조치

② 법 제19조제4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1. 국제 분쟁이나 해적을 피하기 위하여 기항하는 경우
2. 선박승무원 중 위급한 환자가 발생하여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기항하는 경우
3. 출항 항만부터 입항 항만까지 항해시간이 24시간 미만인 경우
4. 그 밖에 선박의 기관고장으로 인한 수리 등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히 입항하는 경우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대한민국 항만에 입항하려는 외국 국적 국제항해선박에서 통보하여 온 선박보안정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운용하는 선박의 입출항에 관한 정보시스템(이하 “선박입출항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국제항해선박의 선박보안정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공유하도록 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4. 11. 19., 2017. 6. 2., 2017. 7. 28.>

④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8. 10. 17.>

1. 국제항해선박의 선박명、국적、선박식별번호、호출부호、종류 및 국제항해선박에 실은 화물의 종류
2. 입항거부나 추방의 원인이 된 보안상 결함 및 법 제19조제3항、제6항에 따른 조치 내용
3. 입항 직전 기항지 및 다음 기항 예정지
4. 해당 항만에서의 출항시간과 다음 기항 항만 도착 예정시간
5. 선박의 보안등급
6. 추가적인 선박보안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연락이 가능한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의 연락처
7. 선원명부

제21조(시정명령등의 세부내용) 법 제19조제12항에서 “시정명령등의 세부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해당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 대하여 하는 명령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7. 6. 2.>

1. 출항정지 :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할 항만에서 해당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을 출항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
2. 이동제한 :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을 관할 해역에서 운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
3. 시정요구 :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정、보완하도록 하는 명령
4. 추방 :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을 대한민국 영해 밖으로 내보내는 명령
5. 선박점검 :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 점검、확인하는 명령

6. 입항거부 :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 관할 항만에 입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

제22조(선박보안정보의 통보절차)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은 법 제19조제12항에 따라 선박 보안정보를 한글이나 영문으로 작성하여 팩스나 선박입출항정보시스템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항만국통제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시정명령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1. 4. 11., 2017. 6. 2.>

1. 삭제 <2011. 4. 11.>

2. 국제선박보안증서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이의신청 조사결과 통보서로 한다.

제24조(국제항해선박에 대한 특별점검)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항해선박의 보안관리체제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4. 12. 31.>

1. 국제항해선박이 최근 1년 이내에 보안사건이나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출항정지·입항거부 또는 추방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외국 항만당국으로부터 국제항해선박의 보안관리체제에 대한 중대한 보안상 결함이 지적되어 통보받은 경우
3. 국제항해선박의 보안관리체제에 대한 중대한 결함의 신고를 받는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항해선박의 보안관리체제에 대하여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특별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점검대상, 점검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선박소유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4. 12. 31.>

제25조(재심사 신청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재심사 신청서로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심사결과 통보서로 한다.

제26조 삭제 <2017. 6. 2.>

제3장 항만시설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제27조(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지식 등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② 법 제23조제2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통보는 별표 2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항만시설보안책임자 지정·변경지정 통보서로 한다.

③ 법 제23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1. 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평가(이하 “항만시설보안평가”라 한다)의 준비
2. 국제항해선박소유자, 총괄보안책임자 및 선박보안책임자와 법 제25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이하 “항만시설보안계획서”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협의·조정하는 일
3.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이행·보완·관리 및 보안유지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이하 “항만시설적합확인서”라 한다)의 비치·관리
5. 법 제30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기록부(이하 “항만시설보안기록부”라 한다)의 작성·관리
6. 법 제31조에 따른 경비·검색인력과 보안시설·장비의 운용·관리
7. 법 제32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정보의 보고 및 제공
8.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보안교육 및 훈련의 실시
9. 선박보안책임자가 요청하는 승선 요구자 신원확인에 대한 지원
10. 보안등급 설정·조정내용의 항만시설 이용 선박 또는 이용예정 선박에 대한 통보
11. 그 밖에 해당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업무

제28조(항만시설보안평가)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평가의 평가항목에는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안사건 또는 보안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사람·시설 및 장비의 확인과 보안상의 위협에 대한 분석
2. 보안상 위협 또는 결함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조치 및 그 우선순위 결정, 보안조치의 실효성
3. 항만시설의 보안상 결함의 보완과 수립된 보안절차의 검증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해당 항만시설운영자를 포함하여 평가반을 구성하거나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항만시설보안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7. 6. 2.>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만시설보안평가를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만시설보안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외비로 관리하고, 해당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송부하여 항만

시설보안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7. 6. 2.>

1. 항만시설보안평가의 수행방법
2. 항만시설보안평가 결과 발견된 보안상 결함의 분석
3. 보안상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보안조치

제29조(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작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는 별표 1의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의 보안등급별 세부 보안조치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 또는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6. 2., 2025. 7. 31.>

1. 폭발물 또는 무기류 등 허용되지 아니한 물품이나 장비를 항만시설 또는 선박으로 반입하거나, 항만시설 또는 선박에서 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항만시설에 계류 중인 국제항해선박이나 항만시설 내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을 정당한 출입절차 없이 무단으로 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3. 항만시설과 선박항만연계활동에 대한 보안상의 위협 또는 보안상의 침해에 대한 대응절차
 4. 보안 3등급에서 정부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
 5. 항만시설보안책임자와 보안담당자의 임무
 6.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보완절차
 7. 법 제32조에 따른 보안사건의 보고절차
 8. 내부보안심사 절차
 - 8의2.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시행을 위한 교육·훈련
 9.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성명과 연락처
 10. 항만시설에 있는 국제항선박에서 선박보안경보장치가 작동되는 경우의 조치
 11. 항만시설과 국제항해선박에 대한 선원 및 방문자의 출입 절차
 - 11의2. 보안장비의 유지·관리
 12. 보안합의서의 작성·시행에 관한 사항
 13. 항만시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 간격, 기종, 감시방향 등을 나타내는 평면도
 14. 그 밖에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령과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 ② 항만시설보안계획서는 항만시설 단위별로 작성하되, 2개 이상 항만시설의 항만시설소유자가 같고, 항만시설의 구조, 위치, 운영방법 및 장비 등이 유사하면 하나의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통합하여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항만시설보안계획서는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제30조(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중요한 변경) 법 제25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13. 3. 24., 2017. 6. 2., 2024. 7. 24.>

1. 대상 항만시설의 규모를 변경하는 때

2. 해당 항만시설에서 중대한 보안사건이 발생하여 항만시설의 보안관리체제 등 보안조치사항을 변경하는 때
 3. 해당 항만시설의 경비·검색인력 및 보안시설·장비를 변경(경비·검색인력의 교체 및 보안시설·장비의 보수는 제외한다)하는 때
- [전문개정 2009. 6. 26.]

제31조(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승인)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7. 6. 2.>

1.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항만시설보안계획서 2부
 2. 변경사유서 1부(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의 항만시설보안계획서를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해당 항만시설보안계획서 1부는 항만시설소유자에게 내주고, 나머지 1부는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하며, 승인한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7. 6. 2.>

제32조(항만시설보안심사의 시기 등)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항만시설보안심사(이하 “항만시설보안심사”라 한다)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시행한다.

1. 최초보안심사 : 항만시설 운영개시일 3개월 전부터 운영개시일 전일까지
2. 갱신보안심사 :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3. 중간보안심사 :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일 3개월 전부터 그 기준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때”란 항만시설에 국제항해선박을 접안시켜 하역장비 등 항만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폐쇄회로텔레비전 등 항만보안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을 시험 운영하려는 때를 말한다. <신설 2020. 8. 19.>

③ 법 제26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7. 6. 2., 2020. 8. 19.>

1. 항만시설에서 보안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2. 항만시설 보안관리체제의 중대한 결함에 대한 신뢰할 만한 신고가 있는 등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항만시설의 보안관리체제에 대하여 보안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법 제25조제3항 후단에 따라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관련된 항만시설에 대하여 변경된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이행 여부에 관한 보안심사를 하려는 때

제33조(항만시설보안심사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 ①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심사 또는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항만시설 최초·갱신·중간·임시 보안심사 신청서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7. 6. 2., 2020. 8. 19.>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만시설보안심사를 하려면 항만시설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7. 6. 2.>

1. 승인받은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비치 여부
2.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따른 항만시설 보안활동의 기록 여부
3. 항만시설의 보안관리체제와 보안시설·장비의 정상운용 여부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를 하는 경우 현장조사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신설 2020. 8. 19.>

1. 승인받은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비치 및 시행 여부
2. 임시운영 기간 동안의 항만시설의 출입통제를 위한 경비·검색인력의 확보 여부
3. 주된 출입구와 그 밖에 차량이 상시 출입하는 출입구의 금속탐지기 및 차단기 설치 여부
4. 울타리, 울타리의 상단 장애물 및 조명등(보안등)의 설치 여부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이하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라 한다)를 하려면 항만시설소유자에게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의 사유·방법·일시 등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미리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심사해야 하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08. 3. 14., 2017. 6. 2., 2020. 8. 19.>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제4항에 따라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를 하는 경우 제32조제3항에 따른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신설 2017. 6. 2., 2020. 8. 19.>

[제목개정 2020. 8. 19.]

제34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교부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20. 8. 19.>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중간보안심사 또는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에 합격한 항만시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7. 6. 2., 2020. 8. 19.>

1. 심사자 서명
2. 심사장소
3. 합격일자
4. 지방해양수산청장의 관인

③ 항만시설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또는 그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항만시설적합확인서·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 재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재교부 신청을 해야 한다.<신설 2017. 6. 2., 2020. 8. 19.>

1.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 가.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분실 또는 훼손 사유서
- 나.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가 훼손된 경우 그 훼손된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원본

2.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가.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원본
-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목개정 2020. 8. 19.]

제35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면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원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20호서식의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7. 6. 2., 2020. 8. 19.>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그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7. 6. 2.>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항만시설적합확인서에 연장한다는 내용을 표기하여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7. 6. 2.>

제35조의2(불합격처분의 유예절차) ①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불합격처분을 유예받으려는 항만시설소유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불합격처분 유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완대책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갯신보안심사, 중간보안심사 또는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
 2. 제1호에 따른 개선방안을 실행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보안상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불합격처분의 유예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완대책의 적절성과 항만시설 운영 중단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만시설 이용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24.]

제36조(항만시설의 운영 금지의 예외) 법 제29조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1. 태풍이나 해일 등으로 해당 항만시설에 긴급피난을 하는 경우
2. 삭제 <2020. 8. 19.>
3. 국가보안기관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0. 8. 19.]

제37조(항만시설보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항만시설보안기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39조에 따른 보안교육·훈련의 내용
 2.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보안사건이나 보안침해의 내용
 3. 항만시설의 보안등급
 4. 내부보안심사 결과와 조치 내용
 5. 항만시설보안평가서와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에 관한 사항
- ② 항만시설보안기록부는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③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된 항만시설보안기록부는 무단으로 열람, 변경, 삭제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항만시설에는 최근 3년간의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항만시설보안기록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7조의2(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 ① 국제여객터미널을 운영하는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여객선으로 사용되는 대한민국 국적 또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이하 “국제항해여객선”이라 한다)에 승선하는 자의 신체·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이하 이 조에서 “보안검색장비”라 한다)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9.>

② 제1항의 항만시설소유자는 보안검색을 거부하거나 폭발물이나 무기류 등을 휴대한 자가 보안검색이 완료된 지역으로 진입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항만시설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승선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 직접 신체의 검색을 하거나 휴대물품의 개봉검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9.>

1. 보안검색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2. 보안검색장비의 경보음이 울리는 경우
3. 폭발물이나 무기류 등을 휴대하거나 은닉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4. 보안검색장비를 통한 검색 결과 그 내용물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5. 항만시설의 보안등급이 상향되거나 보안상 위협에 관한 정보의 입수 등에 따라 개봉검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의 항만시설소유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안검색 결과 승선하는 자가 휴대한 폭발물이나 무기류 등이 선박보안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수하물로 싣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6. 2.]

제37조의3(보안검색장비의 종류)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 인증의 대상이 되는 보안검색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해물품을 검색하기 위한 장비: 엑스선 검색장비, 신발검색장비, 원형(原形)검색장비 등

2. 위해물품을 탐지하기 위한 장비: 금속탐지장비(문형 금속탐지장비와 휴대용 금속탐지장비를 말한다), 폭발물 탐지장비, 폭발물 흔적탐지장비, 액체폭발물탐지장비 등
[본조신설 2021. 12. 9.]

제37조의4(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기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 기준을 갖추는 것
 2. 그 밖에 보안검색장비의 활용 편의성, 안전성 및 내구성 등을 갖추는 것
- [본조신설 2021. 12. 9.]

제37조의5(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신청 및 절차 등) ①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제원표 및 시험용 물품(테스트 키트)에 관한 서류
 4. 보안검색장비의 구조 및 외관도
 5. 보안검색장비의 사용·운영방법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설명서
 6. 보안검색장비의 사후관리를 위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7. 제37조의4에 따른 성능 인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에 따른 서류로 성능 인증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성능시험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시험기관은 평가 내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심사계획에 따라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보안검색장비 성능시험 결과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④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와 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 등이 제37조의4에 따른 성능 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 인증 신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12. 9.]

제37조의6(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점검) ① 인증기관은 법 제30조의3제4항에 따라 보안검색장비가 운영 중에 계속하여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1. 정기점검: 보안검색장비가 성능 인증 기준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여부, 보안검색장비에 대한 품질관리체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매년 점검
2. 수시점검: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나 특별 점검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 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12. 9.]

제37조의7(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0조의6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 이란 별표 3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6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의 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3. 성능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인력, 시험설비 등을 작성한 사업계획서
4. 국제표준화기구(ISO) 또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적합한 품질관리규정
5. 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 지정신청을 받으면 현장평가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험기관의 명칭
2. 시험기관의 소재지
3. 시험기관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4. 시험기관의 업무수행 범위

⑤ 제4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기관 운영규정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험기관의 조직·인력 및 시험설비
2. 시험접수·수행 절차 및 방법
3.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직원의 임무 및 교육훈련
4.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직원 및 시험과정 등의 보안 관리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9.]

제3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험기관에 통지하고 지체 없이 관보에 게재하거나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통지를 받은 시험기관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9.]

제37조의9(수수료) ① 법 제30조의8에 따라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3의4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별도의 부과금을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료 금액, 납부기간, 납부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이 따로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9.]

제38조(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요건) 법 제31조제3항에서 “자본금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1. 2. 19., 2024. 12. 31.>

1. 「경비업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특수경비업무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일 것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납입자본금을 갖출 것

가. 부산항의 경우: 10억원 이상일 것

나. 그 밖의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경우: 5억원 이상일 것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갖출 것

가. 부산항 및 인천항의 경우: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수경비원 신입교육이수증(이하 “특수경비원 신입교육이수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특수경비원이 100명 이상일 것

나. 울산항, 광양항, 포항항, 평택·당진항 및 대산항의 경우: 특수경비원 신입교육이수증을 교부받은 특수경비원이 50명 이상일 것

다. 그 밖의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경우: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이수증을 교부받은 특수경비원이 20명 이상일 것

[전문개정 2017. 6. 2.]

제38조의2(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신청서에 지정 대상 업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9.>

1.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 허가증
2. 특수경비원의 명단 및 해당 인력의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이수증
3. 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 추천서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정 대상 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업체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당 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가 제38조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만시설소유자에게 별지 제21호의8서식의 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9.>

[본조신설 2017. 6. 2.]

제38조의3(경비·검색인력 및 보안시설·장비의 세부기준)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경비·검색인력 및 보안시설·장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7. 6. 2.]

제38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기준 및 해상도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9.>

1.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근거 및 목적
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수, 촬영범위, 촬영시간 및 촬영방법
3.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으로 얻은 영상기록의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
4.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작동 상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관련 기록 유지를 위한 별지 제21호의9서식에 따른 점검기록부의 작성
5.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부서, 관리책임자 및 그 권한, 관리책임자가 영상기록을 확인하는 방법과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6. 영상기록의 열람·제공·이용·파기에 관한 사항 및 관련 기록 유지를 위한 별지 제21호의 10서식에 따른 영상기록 관리대장의 작성

7. 영상기록의 수집 목적 외의 열람, 제공, 이용의 제한
 8. 영상기록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 [본조신설 2018. 10. 17.]

제39조(항만시설보안정보의 제공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항만시설에서 발생한 보안사건
 2. 보안사건에 대한 조치결과 또는 대응계획
-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으로부터 입수된 보안상 위협에 관한 정보
 2. 항만시설보다 높은 보안등급으로 입항하는 선박과 그 선박의 여객 또는 화물 등에 대한 정보
 3. 그 밖의 입수된 보안상 위협에 관한 정보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안사건 발생사실의 보고 또는 정보의 제공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항만시설 보안사건발생보고서, 보안정보제공서로 한다. 다만, 보고 또는 정보의 내용이 시급한 경우에는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먼저 보고하거나 제공하고 사후에 해당 서식으로 보고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4.>

제40조(항만시설 이용자의 출입제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울타리, 담 또는 장벽으로 보호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20. 7. 30., 2021. 6. 30.>

1. 안벽(부두 벽), 소형선 부두, 잔교(棧橋: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 형태로 만든 구조물), 돌핀, 선착장 및 램프(경사식 진출입로) 등 선박계류지역
 2. 갑문, 도로, 교량, 궤도 및 운하
 3. 창고, 화물장치장, 컨테이너 조작장, 화물터미널, 사일로 및 저유시설
 4. 선박의 입항과 출항을 위한 항로표지, 신호, 조명, 항만관제시설 등 항행보조시설이 설치된 지역
 5.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화물이송시설 및 배관시설 등 하역시설이 설치된 지역
 6. 국제여객터미널 내 출입국심사장, 세관검사장, 방송실, 경비보안상황실 및 보안검색을 마친 여객 또는 화물이 대기하는 지역, 통로
 7. 항만운영 상황실, 경비보안 상황실, 발전실, 변전실, 통신실, 기계실, 전산장비실, 공기조화장치실 및 인화성, 폭발성 화물 저장지역
 8. 비밀보관소, 무기고 및 탄약고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의 부대지역
- ②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별도로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촬영허가를 받은 경우에

는 그렇지 않다.<개정 2008. 3. 14., 2013. 3. 24., 2020. 8. 19.>

1. 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지역
2. 제1항의 지역을 보호하는 울타리·담 또는 장벽이 설치된 구역, 접근로, 출입구 및 보안검색이 이루어지는 구역

제40조의2(항만시설 촬영결과물의 발간·복제 또는 배포행위 허가의 절차 등) ① 영 제11조의 2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으로 한다.

② 영 제11의2제2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항만시설보안책임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촬영결과물(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 내외부에서 촬영한 결과물을 말한다)의 발간·복제 또는 배포(재배포를 포함한다)로 인해 해당 항만시설에 보안사건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토를 요청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그 검토 결과를 항만시설보안책임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24.]

[중전 제40조의2는 제40조의3으로 이동 <2024. 7. 24.>]

제40조의3(무기 반입·소지 허가의 절차)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무기 반입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무기 반입·소지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호 업무 수행 등의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입 전까지 그 사실을 미리 유선 등으로 통보하고, 반입 후 3일 이내에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7. 24.>

1. 무기를 반입·소지하려는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및 전화번호
2. 무기를 반입·소지하려는 사람의 여권번호(외국인만 해당한다)
3. 출입하려는 항만시설·선박의 명칭 및 출입 일시
4. 무기의 반입·소지 사유
5. 무기(탄약을 포함한다)의 종류 및 수량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무기의 반입·소지 목적 및 종류가 각 영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에 부합하면 그 반입·소지를 허가해야 한다.<개정 2024. 7. 24.>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무기의 반입·소지를 허가한 경우 이를 해당 시설의 항만시설보안책임자, 해당 선박의 선박보안책임자 및 관할 구역 국가보안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8. 19.]

[제40조의2에서 이동 <2024. 7. 24.>]

제40조의4(항만시설에서의 드론 비행승인 절차 등) ① 법 제33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비행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드론 비행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항만시설보안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드론 비행에 관한 안전관리 대책
 2. 드론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피해자 보호 대책
 - ② 법 제33조의2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목적을 말한다.
 1. 시설물 붕괴·전도 등으로 인한 재해·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안전진단
 2. 산불, 건물·선박 화재 등 화재의 예방
 3. 응급환자를 위한 장기(臟器) 이송 및 구조·구급활동
 4. 풍수해 및 수질오염 등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점검
 5. 테러 예방 및 대응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공공목적과 유사한 공공목적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목적
- [본조신설 2024. 7. 24.]

제4장 보칙

제41조(보안위원회 심의사항) 법 제3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3. 6. 24.>

1. 국가안보와 관련된 보안사건 또는 보안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보안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등급별 세부 조치사항의 일시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가보안기관이나 보안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42조(보안합의서 작성 등) 법 제35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1. 국제항해선박과 국제항해선박 간 또는 국제항해선박과 그 선박이이용하는 항만시설 간의 보안등급이 다른 경우
2. 대한민국과 다른 특정 국가 간을 운항하는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 당사국 간 협정이 있는 경우
3. 국제항해선박이나 항만시설에 보안사건이 발생하거나 보안상의 위협이 있는 경우

제43조(보안합의서의 작성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보안합의서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해당 선박보안책임자또는 항만시설보안책임자가 각각 서명한 후 교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환한 보안합의서는 해당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에 각각 5년 이상 보관한다.

제44조(내부보안심사의 내용·절차 등)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내부보안심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선박보안계획서나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따른 보안활동 이행상태
 2. 선박보안계획서나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따른 보안시설·장비의 운용상태
 3. 보안교육·훈련의 이행상태
 4. 보안책임자와 보안담당자의 선박보안계획서나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숙지상태 등
- ② 내부보안심사는 선박보안계획서나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따라 시행하고, 각각의 계획서에 따라 보안활동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해당 보안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며, 해당 내부보안심사 결과에 관한 보고서는 다음 선박보안심사나 항만시설보안심사를 받을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③ 내부보안심사자의 자격요건은 국제항해선박의 경우 별표 2에 따른 총괄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을, 항만시설의 경우 같은 표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각각 준용한다.
- ④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내부보안심사 업무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내부보안심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회사나 해당 선박 또는 항만시설의 규모·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6. 2.>
- ⑤ 항만시설소유자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내부보안심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내부보안심사자 지정 통보서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7. 6. 2., 2023. 6. 30.>

제45조(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 등) 법 제37조에 따른 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46조(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6. 24., 2017. 6. 2., 2020. 8. 19.>

1. 선박보안심사 또는 항만시설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추는 것
2. 선박보안심사 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선박보안심사관의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항만시설보안심사 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심사관의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각각 7명 이상 보유할 것
3. 11개 이상의 지방사무소를 둘 것. 이 경우 7곳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각각 1개 이상의 지방사무소를 둘 것
4.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령과 국제협약에 따른 보안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보안심사에 관한 규정을 갖추는 것
5. 4개 이상의 해외사무소를 둘 것(외국에서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에 관한 보안심사관의 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7조(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1. 4. 11., 2013. 3. 24.>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보안심사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3. 보안심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보안심사에 관한 내부규정
4. 그 밖에 제46조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안심사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안심사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2. 보안심사 기준의 체계적인 수립·유지 및 준수에 관한 사항
3. 보안심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책임·권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보안심사업무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5. 대항기관 내부 감사 체계에 관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안심사대항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을 대항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보안심사대항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3. 3. 24.>

제48조(대항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항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 8. 1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항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3. 3. 24.>

제49조(대항기관의 지도·감독) 제47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대항기관은 매반기 종료일부터 10일까지 보안심사업무를 대행한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제50조(보안교육 및 훈련 등)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합동보안훈련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파괴행위로부터 항만시설이나 국제항해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훈련
2. 국제항해선박 또는 승선자의 납치 또는 강탈을 방지하기 위한 훈련
3. 국제항해선박과 국제항해선박의 설비, 화물 또는 선용품을 이용한 보안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
4.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한 폭발물 또는 무기류의 밀수나 밀항을 방지하기 위한 훈련
5. 항만 출입구, 갑문 또는 진입수로 등의 봉쇄에 관한 훈련
6. 핵무기나 생화학 공격에 대비한 훈련

② 제1항에 따른 합동보안훈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8. 3. 14., 2017. 6. 2.>

1. 모의훈련 또는 세미나

2. 그 밖의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실시하는 다른 훈련·연습과의 병행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모의훈련은 선박보안경보 수신 및 전파 훈련을 병행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유선·무선·위성통신이나 팩스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7. 6. 2.>

④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국제적인 합동보안훈련에 참여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팩스, 전자우편 또는 서면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3. 3. 24.>

1. 합동훈련의 일시, 장소, 개요 및 참여 선박

2. 합동훈련의 결과

⑤ 선박보안책임자는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해당 국제항해선박 승선인원의 4분의 1 이상이 교체된 경우에는 선원이 교체된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그 선원에 대한 보안훈련·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에 보안교육·훈련에 참여하지 아니한 선원이 있으면 그 선원도 함께 보안훈련·교육을 하여야 한다.

⑥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보안책임자 및 보안담당자에 대한 보안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2.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국가보안기관의 책임과 기능에 관한 사항
 3. 선박보안평가 및 항만시설보안평가에 관한 사항
 4. 선박보안계획서 또는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관한 사항
 5. 보안장비의 종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6. 국제항해선박 또는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상 위협의 유형, 대응방법 및 보안조치에 관한 사항
 7. 보안사건에 대한 준비 및 대응계획에 관한 사항
 8. 보안 관련 정보의 취급 및 통신 요령에 관한 사항
 9. 보안 행정 및 훈련에 관한 사항
 10. 무기 등 위험물질의 탐지에 관한 사항
- ⑦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시설보안책임자 및 보안담당자가 매년 제6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교육·훈련을 6시간 이상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제4호 및 제6호는 항만시설에 관련된 내용만 해당한다.

제51조(보안교육기관의 지정신청)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보안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보안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1. 4. 11., 2013. 3. 24.>

1. 보안교육기관의 시설 등의 소유에 관한 증명서류(전세 또는 임대인 경우 계약서 사본)

2. 영 제14조의 보안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안교육 시행계획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안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을 보안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보안교육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제52조(보안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53조(보안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제51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보안교육기관은 매 반기 종료일부터 10일까지 보안교육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제54조(보안감독관의 지정·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안감독관(이하 “보안감독관”이라 한다)을 선박보안감독관과 항만시설보안감독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신설 2021. 2. 19.>

② 보안감독관의 자격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신설 2021. 2. 19.>

③ 보안감독관은 법 제41조에 따른 점검 결과,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1. 2. 19.>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관계 국가보안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합동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관계 국가보안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21. 2. 19.>

1. 합동점검 목적, 대상 및 점검사항

2. 합동점검 일정

3. 합동점검자 인적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안감독관의 지정·운영 및 점검 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 2. 19.>

[제목개정 2021. 2. 19.]

제54조의2(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 승인신청 등)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이하 “항만시설보안료”라 한다)의 징수요율을 승인받거나 변경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6. 2., 2020. 8. 19.>

1. 세금계산서(보안시설 및 장비를 구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2. 계약서 사본(보안시설 및 장비를 구입하거나 경비인력 확보를 위하여 경비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보수명세서 사본(경비인력을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만 해당한다)
4. 항만시설보안료의 수지계산서
5.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변경 전·후 대비표(징수요율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항만시설보안료 사용계획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 승인(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항만시설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7. 6. 2., 2020. 8. 19.>

③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은 승인받은 연도의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의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신설 2020. 8. 19.>

④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자등(이하 “해상화물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를 지급한다.<신설 2020. 8. 19.>

1. 항만시설소유자가 국가 또는 시·도인 경우: 납부한 항만시설보안료 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2. 항만시설소유자가 제1호 외의 자인 경우: 항만시설소유자와 해상화물운송사업자등이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항만법」 제26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매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경비를 청구해야 한다.<신설 2020. 8. 19.>

[본조신설 2010. 10. 22.]

제55조(수수료)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 승인·변경승인, 선박보안심사, 임시선박보안심사, 특별선박보안심사,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승인·변경승인, 항만시설보안심사,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및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7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0. 8. 19.>

제56조 삭제 <2023. 3. 10.>

부칙 <제411호, 2008. 2.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호, 2008. 3. 14.>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호,2009. 2.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1호,2009. 6.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호,2009. 12. 14.> (항만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④ 부터 ⑧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01호,2010. 10.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 승인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제5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소유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350호,2011. 4. 1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4호,2012. 1. 6.>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제1항 ”을 “ 「해사안전법」 제49조제1항 ”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뒤쪽의 제출서류란 제1호다목 중 “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제1항 ”을 “ 「해사안전법」 제49조제1항 ”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호, 2013. 3. 24.>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 국토해양부령 ”을 각각 “ 해양수산부령 ”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제8호, 제5조제2항제7호, 제10조제3항제3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나목, 제20조제3항 후단,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31조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8조제2항, 제49조, 제50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3조,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 국토해양부장관 ”을 각각 “ 해양수산부장관 ”으로 한다.

별표 2의 경력요건의 선박의 총괄보안책임자란의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란 제3호 중 “ 국토해양업 ”을 각각 “ 해양수산업 ”으로 한다.

별표 5의 기본자격의 기본경력의 자격기준란 가목 중 “ 국토해양계 ”를 “ 해양수산계 ”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 국토해양부 ”를 “ 해양수산부 ”로 한다.

⑤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30호, 2013. 6.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이력기록부 재교부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박이력기록부 재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선박식별번호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박식별번호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박식별번호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3호,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호, 2014. 11. 19.>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127호, 2014. 12. 31.> (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호, 2014.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점검의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착수한 특별점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9호,2016. 9.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호,2017. 1. 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35호,2017. 6. 2.>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호,2017. 7. 28.>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호,2017. 10. 10.>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호,2017. 12. 28.>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3의2를 삭제한다.

부칙 <제306호,2018. 10. 17.>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 제235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4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은 2019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2호, 2020. 4. 6.>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0호, 2020. 7. 30.> (항만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물양장”을 “소형선 부두”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428호, 2020. 8. 19.>

이 규칙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3호, 2021. 2. 19.>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호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6호, 2021. 6. 3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1호, 2021. 12. 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에 관한 특례) 항만시설소유자는 법률 제17615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2021년 12월 9일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보안검색장비 중 제작국가 등의 보안검색장비 인증 공인기관으로부터 성능을 인증받은 보안검색장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연수(「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한 경제적 사용연수를 말한다)를 다할 때

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592호, 2023. 3. 1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1호, 2023.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2호, 2024. 2. 5.>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 「해사안전법」 제49조제1항 ”을 “ 「해상교통안전법」 제51조제1항 ”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제1호다목 중 “ 「해사안전법」 제49조제1항 ”을 “ 「해상교통안전법」 제51조제1항 ”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687호, 2024. 7. 24.>

이 규칙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0호, 2024. 12. 31.> (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0호, 2025. 7.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0호, 2026. 3.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3.6.24>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의 보안등급별 세부 보안조치사항 (제3조제3항 관련)

| 구 분 | | 조 치 사 항 |
|-----------------------------------|-----------|---|
| 국제
항해
선박
소유자
조치
사항 | 보안
1등급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항해선박에 승선할 수 있는 출입구별로 당직자를 배치하거나 폐쇄하여 무단출입을 방지할 것 2. 국제항해선박에 승선하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할 것 3. 국제항해선박에 승선하려는 자의 소지품을 검색하고 무기류는 선내 반입을 금지할 것 4. 국제항해선박 내 보안이 필요한 구역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선박보안책임자의 허락 없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할 것 5. 국제항해선박 주위와 선박 내의 제한구역을 주기적으로 감시할 것 6. 국제항해선박에 선적되는 화물과 선용품을 검색할 것 7. 그 밖에 법 제4조에 따른 국제협약에서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 보안 1등급에서 취하도록 정한 보안조치를 할 것 |
| | 보안
2등급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항해선박에 대한 보안 1등급 시의 조치사항을 이행할 것 2. 국제항해선박에 승선할 수 있는 출입구를 2분의 1 이상 폐쇄할 것 3. 해상을 통하여 국제항해선박에 접근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접근하는 자나 선박 등에 경고 등의 조치를 할 것 4. 국제항해선박에 승선하려는 자에 대하여 검색대를 설치하여 검색할 것 5. 제한구역에 근무자를 배치하여 상시 순찰할 것 6. 국제항해선박에 선적되는 화물 및 선용품에 대하여 금속탐지기 등으로 정밀검색을 할 것 7. 그 밖에 법 제4조에 따른 국제협약에서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 보안 2등급에서 취하도록 정한 보안조치를 할 것 |
| | 보안
3등급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항해선박에 대한 보안 2등급 시의 조치사항을 이행할 것 2. 선박출입구를 하나로 제한하고 보안상 필요한 자에게만 승선을 허락할 것 3. 국제항해선박에 화물이나 선용품 선적을 중단할 것 4. 국제항해선박 전체를 수색할 것 5. 국제항해선박의 모든 조명장치를 점등할 것 6. 국제항해선박(여객선에 한정한다)에 위탁 수하물의 선적을 금지할 것 7. 그 밖에 법 제4조에 따른 국제협약에서 국제항해선박에 |

| | | |
|-----------------------------|-----------|--|
| 항만
시설
소유자
조치
사항 | 보안
1등급 | <p>대하여 보안 3등급에서 취하도록 정한 보안조치를 할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항만시설을 출입하는 인원이나 차량에 대한 일상적인 보안검색, 경계 및 무단출입 방지 업무를 수행할 것 2. 허가받지 아니한 인원과 무기류의 항만시설 반입을 금지할 것 3. 항만시설 내에 보안상 필요에 따라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제한구역은 허가받은 인원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할 것 4. 화물과 선용품의 반입·반출, 항만시설 내 이동, 보관 및 처리과정에서의 보안상 위협을 초래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감시할 것 5. 항만시설 보안업무 담당자 간 통신수단을 확보하고 통신보안에 대한 조치를 마련할 것 6. 국제여객터미널에서 탑승하는 여객의 위탁 수하물에 대한 검색을 할 것 7. 그 밖에 법 제4조에 따른 국제협약에서 항만시설에 대하여 보안 1등급에서 취하도록 정한 보안조치를 할 것 |
| | 보안
2등급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 1등급 시의 조치사항을 이행할 것 2. 항만시설을 순찰하는 인원을 평상시보다 늘려 배치할 것 3. 항만시설 출입구 2분의 1 이상을 폐쇄할 것 4. 출입자, 출입차량 및 출입자 소지품의 검색 비율을 높여 검색할 것 5. 해상에서의 보안강화를 위하여 순찰선을 운항시킬 것 6. 항만시설에 대한 감시 장비를 계속적으로 운용하고 운용기록은 상시 유지할 것 7. 항만시설 출입구에 철제차단기 등 접근 차단시설을 설치할 것 8. 정박한 선박 주위에 차량의 주차를 통제할 것 9. 국제여객터미널에서 탑승하는 여객의 위탁수하물을 금속탐지기 등으로 정밀검색할 것 10. 그 밖에 법 제4조에 따른 국제협약에서 항만시설에 대하여 보안 2등급에서 취하도록 정한 보안조치를 할 것 |
| | 보안
3등급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 2등급 시의 조치사항을 이행할 것 2. 항만시설보안계획으로 지정한 항만시설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할 것 3. 항만시설보안계획으로 지정한 항만시설에서 화물이동 및 차량이동을 중지시킬 것 4. 항만시설보안계획으로 지정한 항만시설의 운영을 중지할 것 5. 항만시설보안계획으로 지정한 항만시설에서 대피 조치를 할 것 6. 항만시설 내 제한구역에 대한 검색을 할 것 7. 항만시설 내 위험물질의 보호 조치 및 통제를 할 것 8. 항만시설 내 선용품의 인도를 중지할 것 9. 위탁 수하물의 취급을 금지할 것 10. 그 밖에 법 제4조에 따른 국제협약에서 항만시설에 대하여 보안 3등급에서 취하도록 정한 보안조치를 할 것 |

비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항해선박 또는 항만시설의 보안사고 예방 이나 그 밖의 보안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보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보안등급별 조치사항 중 일부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다른 보안등급의 조치사항 일부를 적용하도록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즉시 그 조정 내용을 알려야 한다.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6. 3. 25.>

총괄보안책임자·선박보안책임자 및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44조제3항 관련)

| 구 분 | 선 박 | | 항만시설 |
|----------------------------|--|--|--|
| | 총괄보안책임자 | 선박보안책임자 | 항만시설보안책임자 |
| 경력
또는
자격
취득
요건 |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또는 자격이 있거나 국제항해선박 승무경력, 보안업무에 종사한 경력 또는 해양수산업 관련 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합산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항해선박 승선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보안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해양수산업 관련 단체에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1급의 자격이 있는 자 |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직원으로서의 승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항만시설 운영에 종사한 경력 또는 보안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전문
지식
요건 | 법 제40조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에서 제50조제6항 각 호(제3호·제4호 및 제6호는 선박에 관련된 내용만 | 법 제40조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에서 제50조제6항 각 호(제3호·제4호 및 제6호는 선박에 관련된 내용만 | 법 제40조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에서 제50조제6항 각 호(제3호·제4호 및 제6호는 항만시설에 관련된 내 |

| | | | |
|--|----------------------------------|----------------------------------|-------------------------------------|
| | 해당됨)의 내용이 포함된 보안교육을 18시간 이상 받은 자 | 해당됨)의 내용이 포함된 보안교육을 12시간 이상 받은 자 | 용만 해당됨)의 내용이 포함된 보안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은 자 |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3. 6. 30.>

선박보안심사의 세부내용(제11조제1항 관련)

| 보안심사 종류 | 보안심사 세부내용 |
|--------------------------------|---|
| 최초보안심사 ·
중간보안심사 및
갱신보안심사 | 1. 승인된 선박보안계획서의 비치 여부
2. 선박보안계획서에 따른 선박 보안활동의 기록 여부
3. 보안관리체제와 선박보안경보장치 등 보안장비의 정상운용 여부
4. 내부보안심사의 절차 이행 여부 및 내부보안심사자 적격 여부 |
| 임시선박보안심사 | 1. 선박보안평가의 실시 및 선박보안평가 결과를 선박보안계획서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2.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절차 이행 및 시행 여부
3. 선박보안경보장치의 설치 및 작동 여부
4. 총괄보안책임자 및 선박보안책임자의 사무 수행 및 보안관리체제에 대한 숙지 여부
5. 내부보안심사를 포함하여 최초보안심사를 받기 위한 준비상태 |
| 특별선박보안심사 |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특별보안심사의 원인이 된 사유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2] <신설 2021. 12. 9.>

시험기관의 지정기준(제37조의7제1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일 것
 - 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보안업무규정」 제10조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권자로 지정된 시험기관일 것
 - 나.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에서 인정받은 시험기관일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기술인력을 모두 보유할 것. 다만, 나목 또는 다목의 인력이 라목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라목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가. 「보안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 나. 인정기구에서 인정받은 시험기관에서 시험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 다. 보안검색에 사용하는 장비의 시험·평가 또는 관련 연구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 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 보유자 1명 이상
3.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추는 것
 - 가. 다음의 시설을 모두 갖춘 시험실
 - 1) 항온항습 시설
 - 2) 보안검색장비 성능시험 시설
 - 3) 화학물질 보관 및 취급을 위한 시설
 -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나. 엑스선검색장비 이미지품질평가용 시험용 장비(테스트 키트)
 - 다. 엑스선검색장비 표면방사선량을 측정장비
 - 라. 엑스선검색장비 연속동작시험용 시설
 - 마. 엑스선검색장비 등 대형장비용 온도·습도시험실(장비)
 - 바. 폭발물검색장비·액체폭발물검색장비·폭발물흔적탐지장비 시험용 유사폭발물 시료
 - 사. 문형금속탐지장비·휴대용금속탐지장비·시험용 금속물질 시료
 - 아. 휴대용 금속탐지장비 및 시험용 낙하시험 장비
 - 자. 시험데이터 기록 및 저장 장비

차.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3] <신설 2021. 12. 9.>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제37조의8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나 한 개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라. 처분권자는 해당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1) 가중 사유

- 가)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 | | |
|-------------------------------------|--------------|--------------|----------|-------------|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 법 제30조의7제1항제 | 지정취소 | | |

| | | | | |
|--|----------------|-------------|--------------|------|
| 받은 경우 | 1호 | | | |
| 나.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성능시험을 실시한 경우 | 법 제30조의7제1항제2호 | 지정취소 | |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의7제1항제3호 | 업무정지
30일 | 업무정지
60일 | 지정취소 |
| 라.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기준·방법·절차 등을 위반하여 성능시험을 실시한 경우 | 법 제30조의7제1항제4호 | 업무정지
60일 | 업무정지
120일 | 지정취소 |
| 마. 법 제30조의6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30조의7제1항제5호 | 시정조치 | 시정조치 | 지정취소 |
| 바. 성능시험 결과를 거짓으로 조작하여 수행한 경우 | 법 제30조의7제1항제6호 | 업무정지
90일 | 지정취소 |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4] <신설 2021. 12. 9.>

수수료의 산정기준 (제37조의9제2항 관련)

| 구분 | 수수료 |
|------------------------------|--|
| 인증기관의 성능
인증 및 성능점검
수수료 | <p>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해서 산정한 금액</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료: 성능 인증·인증서 변경·성능 점검 신청서의 접수 사무 및 신청서류 심사, 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비용 2. 인건비: 성능 인증·성능 점검 업무에 참여한 인력의 시간당 인건비에 해당 업무를 수행한 시간을 곱해서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시간당 인건비는 인증기관에서 책정한 인건비를 적용 3. 직접비용: 성능 인증·성능 점검 업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국내외 출장여비, 시험·검사 결과 및 적합성 자료의 분석 등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 4. 간접비용: 성능 인증·성능 점검 업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기술료 및 경비 등을 포함한 비용 |
| 시험기관의 성능시
험 수수료 | <p>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해서 산정한 금액</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료: 시험 접수·검토·시험결과서 제출에 필요한 기본수수료 2. 인건비: 시험활동에 투입되는 인력의 시험수행 시간당 인건비(「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엔지니어링기술자 임금단가를 적용) 3. 재료비: 시험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모성 재료 비용 4. 장비사용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감가상각비: 장비별 법정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되, 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비용 나. 시설유지비: 장비가동을 위해서 필요한 소모성 부품의 비용, 장비수리 및 교환에 따른 부품의 비용, 장비가동에 필요한 시설유지 비용 5. 출장비: 시험활동에 투입되는 인력의 현장출장 여비 6. 그 밖의 비용: 그 밖에 시험·검사대상 인증제품의 운반비 등 시험 실시를 위해 지출하는 경비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6. 30>

경비·검색인력 및 보안시설·장비의 세부기준(제38조의3 및 제38조의4 관련)

| 구분 | 세부 기준 |
|--------------------------|--|
| 경비·검색인력 | <p>1. 다음 각 목에 따른 부두 출입구에는 경비·검색인력으로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또는 「경비업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특수경비원을 2명 이상을 상시 배치한다.</p> <p>가. 부두의 주된 출입구</p> <p>나. 주된 출입구 외에 사람과 차량이 상시 출입하는 그 밖의 출입구</p> <p>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수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선소의 부두 출입구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경비·검색인력을 1명 이상 상시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최근 2년간 3회 이상 보안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날부터 2년간 제1호에 따른 경비·검색인력을 2명 이상 상시 배치한다.</p> <p>3. 「보안업무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안시설 외의 항만시설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p> <p>가. 야간에 국제항해선박의 이용이 없고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에 의한 감시·녹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주간에만 배치</p> <p>나. 국제항해선박의 이용이 연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경비·검색인력을 상시 배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이 계류 중일 때에만 배치</p> <p>4. 국제항해여객선이 취항하는 국제여객터미널 또는 국제크루즈터미널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따른 경비·검색인력 외에 그 국제여객터미널 또는 국제크루즈터미널에서 출항 수속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3명 이상의 보안검색인력을 추가로 배치한다.</p> |
| 보안시설
(외곽 울타리·담 또는 장벽) | <p>1.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의 항만시설소유자는 그 지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울타리, 담 또는 장벽(이하 이 표에서 “울타리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p> <p>가. 울타리등의 높이[윤형(輪形)철조망 등 장애물의 높이를 제외한]는 지면에서부터 울타리등의 상단까지 2.7m 이상으로 할 것</p> <p>나. 울타리등의 하단과 지면의 간격은 5cm(배수시설의 설치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20cm로 한다) 이하로 할 것</p> <p>다. 울타리등의 상단에는 윤형철조망 등 장애물을 설치할 것</p> <p>라. 울타리등의 기둥은 지하 60cm 이상 깊이로 묻을 것(지하 시설 또는 암반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40cm 이상의 깊이로 묻고 콘크리트 등으로 보강한다)</p> <p>마. 울타리는 절단 및 훼손 등에 강한 재질을 사용하고, 강도는 사람이 통과할 수 있는 크기(62cm×62cm)로서 절단하는 시간이 25초 이상 소요되도록 설치할 것</p> <p>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낭떠러지 등 자연의 방어벽, 안벽(岸壁) 등 계류시설 또는 다른 항만시설과 인접하여 울타리등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p> <p>3. 항만친수시설, 도심과 인접한 지역 및 관광지 등의 경우 항만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1호다목에 따른 윤형철조망 등 장애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높이는 2.7m 이상을 유지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감지기 등 침입탐지장비를 중복하여 설치하여야 한다.</p> |

| | |
|--|--|
| 보안시설
(조명시설)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항만시설(육상구역에만 해당한다)의 출입구, 선박계류지역, 야적장 및 율타리등에는 지면과 같은 높이에서 2럭스(Lux) 이상의 조도(밝기)가 유지되도록 조명등(보안등)을 설치한다. 2. 조명등(보안등)은 해가 질 때부터 해가 뜰 때까지 상시 조명되도록 하되, 야간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조명등을 켜지 아니할 수 있다. |
| 보안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감지기 등
침입탐지
장비)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의 지역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한다.
가. 국제여객터미널의 여객 대기지역
나.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에 설치하는 율타리등 2. 제1호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때에는 감시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감시구역이 10m 이상 중첩되도록 설치하고, 모든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 및 침입탐지장비 알람 등 보안장비의 각종 기록은 90일 이상 보관한다. 3.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성능은 확대 등의 수단으로 사람의 얼굴 또는 30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해상도를 유지하여야 하고, 감지기 등 종류가 다른 1개 이상의 침입탐지장비를 중복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 보안장비
(금속
탐지기,
검색경)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두의 주된 출입구와 그 밖에 상시 출입이 이루어지는 출입구에는 대인(對人) 검색용 문형 또는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1대 이상 갖추어 둔다. 2. 부두의 차량 출입구에는 검색경(檢索鏡) 등 차량 하부 검색장비를 1대 이상 갖추어 두거나 설치한다. |
| 보안장비
(철침판,
방지턱,
차단기)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두의 주된 출입구에는 차량의 무단 진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을 설치·운영한다.
가. 철침판 또는 차량돌진 방지턱 1개 이상
나. 차량 통과를 차단할 수 있는 철제차단기(Barricade) 1개 이상. 이 경우 차량이 시속 30km 이하로 진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그 밖에 모래, 화분대 등 미관을 고려한 장애물 1개 이상 2. 대형화물 적재차량의 출입을 위한 출입구에는 개폐형(開閉型) 차단기를 설치한다. 이 경우 그 설치 기준은 율타리등의 기준을 준용한다. |
| 보안장비
(통신장비) | 근무 중 경비·검색인력 간 또는 항만시설소유자 또는 항만시설보안 책임자 간에 비상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보유한다.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6. 3. 25.>

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제45조 관련)

1. 선박보안심사관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선박보안심사(최초보안심사·갱신보안심사 또는 중간보안심사)에 1회 이상 참여한 경력이 있을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1) 해양수산계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 또는 전문대학(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말한다)에서 선박의 항해, 기관 또는 운항과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국제항해선박에서 2년 이상 승선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승선 경력을 산정할 때에는 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
- 2) 선박의 안전 또는 보안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1)에 따라 국제항해선박에서 승선한 경력과 2)에 따라 선박의 안전 또는 보안 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승선 경력을 산정할 때에는 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

다. 법 제40조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에서 다음의 교육을 모두 받았을 것

- 1)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 규칙」(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 ISPS Code)의 내용: 7시간
- 2) 선박보안계획서의 작성·이행과 승인요령: 7시간
- 3) 선박보안평가와 선박보안심사 요령: 7시간
- 4) 선박 및 항만 보안시설·설비의 운용·관리: 4시간
- 5) 선박보안 일반: 3시간

2. 항만시설보안심사관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항만시설보안심사(최초보안심사·갱신보안심사 또는 중간보안심사)에 1회 이상 참여한 경력이 있을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1) 항만시설 보안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항만시설보안책임자로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7급 이상의 공무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가) 해양수산 분야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나) 항만시설 보안 관련 경력이 1년 이상일 것(7급 이상의 직급에서의 경력으로 한정한다)
- 4) 제1호에 따른 선박보안심사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았을 것

- 1) 법 제40조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별표 2에 따라 항만시설보안책임자에게 요구되는 보안교육: 20시간

2)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항만시설보안 실무: 20시간

비 고

1. 선박보안심사관은 3년 단위로 외국 국적 국제항해선박을 포함한 국제항해선박에 대한 최초보안심사·갱신보안심사 또는 중간보안심사 중 어느 하나에 참여하여 보안심사경력을 유지해야 한다.
2. 위의 보안심사경력을 유지하지 못한 선박보안심사관은 제1호다목1)부터 3)까지의 교육은 각 2시간 이상, 같은 목 4) 및 5)의 교육은 각각 1시간 이상, 총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보수교육을 받은 때부터 3년 이내에 최초보안심사·갱신보안심사 또는 중간보안심사 중 어느 하나에 1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3. 6. 30.>

보안심사대행기관 및 보안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제48조제1항 및 제52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선박소유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된 경우

2.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가. 보안심사대행기관의 경우

| 위 반 행 위 | 근거법령 |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법 제38조 제2항제1호 | 지정 취소 | - | - | - |
| 2)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 지정기 | 가) 등록요건 중 일부가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38조 제2항제2호 | 시정 명령 | 업무 정지 1개월 | 지정취소 |
| | | | | | - |

| | | | | | | |
|--|------------------------|------------------|------------------|------------------|----------|---|
| 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나) 등록요건의 전부가 미달하게 된 경우 | | 업무
정지 1개
월 | 지정
취소 | - | - |
| 3)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 법 제38조 제2항제3호 | 시정
명령 | 업무
정지 1개
월 | 업무
정지 3개
월 | 지정
취소 | |
| 4)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출입 또는 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법 제38조 제2항제4호 | 시정
명령 | 업무
정지 1개
월 | 업무
정지 3개
월 | 지정
취소 | |
| 5)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법 제38조 제2항제5호 | 업무
정지 1개
월 | 업무
정지 3개
월 | 지정
취소 | | |

나. 보안교육기관의 경우

| 위 반 행 위 | 근거법령 |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법 제40조 제3항제1호 | 지정
취소 | - | - | |
| 2)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의 시설 기준·교수·인원 등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가) 지정요건의 시설 또는 교수가 부족한 경우 | 개선
명령 | 업무
정지 1개
월 | 지정
취소 | - |
| | 나) 지정요건 중 시설 또는 교수가 전혀 없는 경우 | 업무
정지 1개
월 | 지정
취소 | - | - |
| 3)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 법 제40조 제3항제3호 | 시정
명령 | 업무
정지 1개
월 | 업무
정지 3개
월 | 지정
취소 |
| 4)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출입 또는 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법 제40조 제3항제4호 | 시정
명령 | 업무
정지 1개
월 | 업무
정지 3개
월 | 지정
취소 |
| 5)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법 제40조 제1항제5호 | 업무
정지 1개
월 | 업무
정지 3개
월 | 지정
취소 |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의2] <신설 2021. 2. 19.>

보안감독관의 자격기준(제54조제2항 관련)

1. 선박보안감독관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 가. 별표 5 제1호에 따른 선박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을 갖추었을 것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박보안심사관으로서 1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 2) 「선박안전법」 제68조에 따른 항만국통제업무 또는 같은 법 제69조제2항·제3항에 따른 특별점검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항만시설보안감독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 가. 항만시설 보안·운영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일 것
 - 나. 별표 5 제2호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을 갖추었을 것
 - 다. 법 제23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항만시설의 내부보안심사자로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일 것
 - 라. 보안업무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중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이라 한다) 보안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일 것
 - 마. 보안업무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가중요시설 보안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일 것
 - 바. 보안업무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가중요시설 보안 분야에서 6년 이상 종사한 사람일 것
 - 사.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국가중요시설 보안 분야에서 8년 이상 종사한 사람일 것
 - 아. 국가중요시설 보안 분야에서 9년 이상 종사한 사람일 것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0. 8. 19.>

선박보안계획서 승인, 선박보안심사 및 임시선박보안심사 등의 수수료
(제55조 관련)

1. 선박보안심사 등의 수수료

| 구 분 | 선박의 종류 | 기본수수료 | 비 고 |
|---|---|---------|---|
| 선박보안계획서 승인·변경승인 | 기본 수수료: 67,360원
※ 선박보안계획서 변경승인 수수료의 경우
선박보안계획서 승인 수수료의 2분의 1 감면 | | ○선박보안심사(최초보안심사·갱신보안심사·중간보안심사)·임시선박보안심사·재심사 수수료는 기본수수료에 톤수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경우에는 해당 보안심사 종류별 수수료를 적용한다. |
| 최초보안심사·갱신보안심사 | 제1군에 속하는 선박 | 67,360원 | |
| | 제2군에 속하는 선박 | 84,200원 | |
| 중간보안심사 | 제1군에 속하는 선박 | 50,520원 | |
| | 제2군에 속하는 선박 | 67,360원 | |
| 임시선박보안심사 | 기본수수료: 50,520원 | | |
| 특별선박보안심사 | 없음 | | |
| ○ 선박종류에 따른 구분 | | | |
| - 제1군: 유조선·화학제품운반선·가스운반선·산적화물선·고속화물선 및 그 밖의 화물선 | | | |
| - 제2군: 여객선·고속여객선 및 이동식해양구조물 | | | |
| ○ 톤수계수 | | | |
| - 총톤수 500톤 미만: 0.8 | | | |
| - 총톤수 500톤 이상 1,600톤 미만: 0.9 | | | |
| - 총톤수 1,600톤 이상: 1 | | | |

비고

1. 공휴일 보안심사 및 국외 보안심사의 수수료

가. 공휴일에 하는 보안심사의 수수료는 위 표에 따른 수수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한다.

나. 국외에서의 선박보안심사·임시선박보안심사 수수료는 위 표에 따른 수수료의 4배에 해당하는 수수료로 한다.

2. 보안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보안심사자의 출장에 드는 실비를 별도로 부담한다.

2. 항만시설보안심사 등의 수수료

| 구 분 | 규 모 | 수수료 | | 비 고 |
|--------------------------|--------------------------|----------------------------------|----------|-----|
|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 항만시설 1건당 | · 승인: 55,700원
· 변경승인: 27,850원 | | |
| 항만시설보안심사 | 대상 항만시설
면적 | 최초 · 갱신심사 | 중간심사 | |
| | 10,000㎡미만 | 111,400원 | 55,700원 | |
| | 10,000㎡이상
50,000㎡미만 | 222,800원 | 111,400원 | |
| | 50,000㎡이상
100,000㎡미만 | 401,000원 | 200,500원 | |
| | 100,000㎡이상
200,000㎡미만 | 641,600원 | 320,800원 | |
| | 200,000㎡이상
500,000㎡미만 | 898,200원 | 449,100원 | |
| | 500,000㎡이상 | 1,077,800원 | 538,900원 | |
|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 55,700원 | | | |
|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 | 없음 | | |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6. 2.>

| | | | | | | |
|--|----------|------|------------|--------|-----------|-----|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총괄보안책임자
 ☐ 지정
 ☐ 변경지정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통보서 </div> </div> | | | | | | |
| 선박
소유
자 | ① 명칭(상호) | | | ④ 전화번호 | | |
| | ② 대표자 성명 | | | ⑤ 팩스번호 | | |
| | ③ 주 소 | | | ⑥ 전화번호 | | |
| ⑦ 총괄보안
책임자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
| | | | | | | |
| | 연 락 처 | | | | 업무대행자 |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휴대전화
번호 | 이메일 주소 | 성 명 | 연락처 |
| | | | | | | |
| <p>「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의 사람을 우리 회사 선박의 총괄보안책임자로 지정(지정변경)하였음을 통보합니다.</p>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 년 월 일
 통 보 인(선박소유자) (서명 또는 인)
 [☎ () -] </div>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 귀 하</p> | | | | | | |
| 구비서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총괄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 수수료
없음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선박보안평가 결과서

(제6조제1항 관련)

- 대상 선박명:
- 선박보안평가 일시 및 장소:
- 선박보안평가자:
- 평가항목 및 평가결과:

| 평가항목 | 평가결과 | 비고 |
|--|------|----|
| 1. 출입제한구역의 설정 및 제한구역에 대한 일반인의 출입 통제 | | |
| 2. 국제항해선박에 승선하려는 자에 대한 신원확인 절차 마련 여부 | | |
| 3. 선박의 갑판구역과 선박 주변 육상구역에 대한 감시 대책 | | |
| 4. 국제항해선박에 근무하는 자와 승선하는 자가 휴대하거나 위탁하는 수하물에 대한 통제 방법 | | |
| 5. 화물의 하역절차 및 선용품의 인수절차 | | |
| 6. 국제항해선박의 통신·보안 장비와 정보의 관리 | | |
| 7. 선박보안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 보안활동 | | |
| 8. 국제항해선박에서의 보안상 위협의 확인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 및 조치 | | |
| 9.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시설·장비·인력 및 보안의 취약요인 확인과 대응절차의 수립·시행 | | |
| 비고 1. 선박보안평가결과서는 총괄보안책임자 및 선박보안책임자가 함께 작성하여야 하며, 선박에서 한 선박보안평가의 결과를 요약하여 서술식(문장)으로 적습니다. | | |
| 2. 선박보안평가결과서 작성을 위한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합니다.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3. 25.>

선박보안계획서 [] 승 인 신청서 [] 변경승인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14일(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7일) | |
|----------------------------|-------------------|------|--|--------------------------|--|
| 신청인 | 사업장 명칭 | | | 대표자 성명 | |
| | 주소 | | | | |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선 박 | 선박명 | | | 총톤수 | |
| | 선박번호 | | | 용 도 | |
| | 선박식별번호
(IMO번호) | | | 선적항 | |
|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 | | | |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
|----------|---|--|
| 첨부
서류 | 1. 선박보안계획서 승인 신청의 경우
가. 선박보안평가 결과서 1부
나. 선박보안계획서 2부 | 수수료 |
| | 2. 선박보안계획서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가. 변경하려는 선박보안계획서 2부
나.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별표 7에 따른 |

처리절차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검토 | → | 결재 | → | 통보 |
| 신청인 | | 지방해양수산청 | | | | | | |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3. 25.>

[] 최 초
[] 갱 신
[] 중 간
[] 임시선박

보안심사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 | | |
|-----------------------|------------------|--------------|------|-------------------|--|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14일 | |
| 신청인 | 사업장 명칭 | | | 대표자 성명 | |
| | 주소 | | | | |
| | 안전관리회사
식별번호 | | | |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선박 | 선박명 | | | 총톤수 | |
| | 선박의 종류
(항행구역) | | | 국제선박보안
증서 유효기간 | |
| | 선박번호 | | | 선박식별번호
(IMO번호) | |
| 보안심사를 받으려는
날짜 및 장소 | | (날짜)
(장소) | |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
|----------|---|--|
| 첨부
서류 | 1. 최초보안심사: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사본 | 수수료 |
| | 2. 갱신보안심사 또는 중간보안심사: 국제선박보안증서 사본 | |
| | 3. 임시선박보안심사
가. 선박보안평가 결과서 사본
나.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을 신청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별표 7에 따른 |

처리절차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심사 | → | 결재 | → | 교부 |
| 신청인 | | | | 지방해양수산청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6. 2.>

(제1쪽)

증서번호: 대 한 민국

Certificate No. :



국제선박보안증서

Republic of Korea

(INTERNATIONAL SHIP SECURITY CERTIFICATE)

이 증서는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 규칙」(ISPS Code)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지방해양수산청장(대행기관의 장)에 의해 발급되었습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DE FOR THE SECURITY OF SHIPS AND OF PORT FACILITIES (ISPS Code)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y Director General of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선명(Name of ship):

선박번호(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선적항(Port of registry):

선박의 종류(Type of ship):

총톤수(Gross tonnage):

선박 식별번호(IMO Number):

안전관리회사(Name and address of the Company):

안전관리회사 식별번호(Company Identification Number):

이 증서는 다음 사항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1. 이 선박의 보안시스템 및 해당 보안장비가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 규칙」(ISPS Code) A편 제19.1절에 따라 심사되었음.

that the security system and any associated security equipment of the ship has been verified in accordance with section 19.1 of part A of the ISPS Code;

2. 선박보안심사 결과 이 선박의 보안시스템 및 해당 보안장비가 모든 측면에서 만족스러우며 협약 XI-2장 및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 규칙」(ISPS Code) A편의 요건에 부합함.

that the verification showed that the security system and any associated security equipment of the ship is in all respects satisfactory and that the ship complies with the applicable requirements of chapter XI-2 of the Convention and part A of the ISPS Code;

3. 이 선박은 승인된 선박보안계획서를 갖추고 있음.

that the ship is provided with an approved Ship Security Plan.

이 증서의 발행근거가 된 최초/갱신보안심사 일자:

Date of initial/renewal verification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

이 증서는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 규칙」(ISPS Code) A편 제19.1.1절에 따른 보안심사를 받는 조건으로 ____년 ____월 ____일까지 유효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_____, subject to verifications in accordance with section 9.1.1 of part A of the ISPS Code.

증서의 발행장소(Issued at):

발행일자(Date of issue):

심사자 서명(signature):

지방해양수산청장 (인)

Director General of _____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대행기관의 장)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²]

(제2쪽)

중간보안심사에 관한 표기

(ENDORSEMENT FOR INTERMEDIATE VERIFICATION)

이 증서는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 규칙」(ISPS Code) A편 제19.1.1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간보안심사에서 이 선박이 협약 XI-2장 및 「국제선박 및 항만 시설보안 규칙」의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n intermediate verification required by section 19.1.1 of part A of the ISPS Code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chapter XI-2 of the Convention and part A of the ISPS Code.

중간보안심사 심사자 서명(Signed):

(Intermediate Verification) 심사장소(Place):

합격일자(Date):

지방해양수산청장 (인)

Director General of _____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대행기관의 장)

특별선박보안심사에 관한 표기

(ENDORSEMENT FOR ADDITIONAL VERIFICATIONS)

특별선박보안심사 심사자 서명(Signed):

(Additional Verification) 심사장소(Place):

합격일자(Date):

지방해양수산청장 (인)

Director General of _____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대행기관의 장)

특별선박보안심사 심사자 서명(Signed):

(Additional Verification) 심사장소(Place):

합격일자(Date):

지방해양수산청장 (인)

Director General of _____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대행기관의 장)

특별선박보안심사 심사자 서명(Signed):

(Additional Verification) 심사장소(Place):

합격일자(Date):

지방해양수산청장 (인)

Director General of _____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대행기관의 장)

(제3쪽)

CCertificate No.: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 규칙」 A편 제19.3.7.2절에 적합한 추가보안심사
(ADDITIONAL VERIFICATION IN ACCORDANCE WITH SECTION A/19.3.7.2
OF THE ISPS CODE)

이 증서는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 규칙」(ISPS Code) A편 제19.3.7.2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가보안심사에서 이 선박이 협약 XI-2장 및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 규
칙」의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n additional verification required by section 19.3.7.2 of part
A of the ISPS Code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chapter
XI-2 of the Convention and part A of the ISPS Code.

서명(Signed):

장소(Place):

일자(Date):

지방해양수산청장 (인)

Director General of _____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대행기관의 장)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 규칙」 A편 제19.3.3절이 적용되고 이 증서가 5년 미만의 기
간동안 유효한 경우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표기

(ENDORSEMENT TO EXTEND THE CERTIFICATE IF VALID FOR LESS THAN
5 YEARS WHERE SECTION A/19.3.3 OF THE ISPS CODE APPLIES)

이 선박은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 규칙」(ISPS Code)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며
이 증서는 국제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 A편 제19.3.3절에 따라 _____까지 유효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part A of the ISPS Code, and
the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section 19.3.3 of part A of the ISPS Code,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명(Signed):

장소(Place):

일자(Date):

지방해양수산청장 (인)

Director General of _____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대행기관의 장)

갱신보안심사가 완료된 경우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 규칙」 A편 제19.3.4절에
따른 표기

(ENDORSEMENT WHERE THE RENEWAL VERIFICATION HAS BEEN
COMPLIED AND SECTION A/19.3.4 OF THE ISPS CODE APPLIES)

이 선박은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 규칙」(ISPS Code)의 관련규정에 적합하며 이
증서는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 규칙」 A편 제19.3.4절에 따라 _____까지 유효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part A of the ISPS Code, and
the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section 19.3.3 of part A of the ISPS Code,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명(Signed):

장소(Place):

일자(Date):

지방해양수산청장 (인)

Director General of _____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대행기관의 장)

(제4쪽)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 규칙」 A편 제19.3.5절이 적용되는 보안심사를 위한 항구에 입항 때까지 또는 같은 규칙 A편 제19.3.6절이 적용되는 유예기간동안 이 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표기

(ENDORSEMENT TO EXTEND THE VALIDITY OF THE CERTIFICATE UNTIL REACHING THE PORT OF VERIFICATION WHERE SECTION A/19.3.5 OF THE ISPS CODE APPLIES OR FOR A PERIOD OF GRACE WHERE SECTION A/19.3.6 OF THE ISPS CODE APPLIES)

이 증서는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 규칙」 (ISPS Code) A편 제19.3.5/19.3.6절에 따라 _____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section 19.3.5/19.3.6 of part A of the ISPS Code,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명(Signed):

장소(Place):

일자(Date)

지방해양수산청장 (인)

Director General of _____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대행기관의 장)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 규칙」 A편 제19.3.7.1절이 적용되어 만료일을 앞당기기 위한 표기

(ENDORSEMENT FOR ADVANCEMENT OF EXPIRY DATE WHERE SECTION A/19.3.7.1 OF THE ISPS CODE APPLIES)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 규칙」 (ISPS Code) A편 제19.3.7.1절에 따라, 신규 만료일은 _____입니다.

In accordance with section 19.3.7.1 of part A of the ISPS Code, the new expiry date is _____

서명(Signed):

장소(Place):

일자(Date):

지방해양수산청장 (인)

Director General of _____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대행기관의 장)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6. 2.>

증서번호
Certificate No.: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INTERIM INTERNATIONAL SHIP SECURITY CERTIFICATE)

이 증서는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 규칙」(ISPS Code)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지방해양수산청장(대행기관의 장)에 의해 발급되었습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DE FOR THE SECURITY OF SHIPS AND OF PORT FACILITIES(ISPS Code)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y Director General of _____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선명(Name of ship):

선박번호(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선적항(Port of registry):

선박의 종류(Type of ship):

총톤수(Gross tonnage):

선박식별번호(IMO Number):

안전관리회사(Name and address of the Company):

안전관리회사 식별번호(Company Identification Number):

이 증서는 연속적으로 발행된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입니까? 예/아니오

Is this a subsequent, consecutive interim certificate? Yes/No

만약 그렇다면, 최초의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의 발행일자를 적으십시오.

If Yes, date of issue of initial interim certificate

이 증서는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 규칙」 A편 제19.4.2절의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requirements of section A/19.4.2 of the ISPS Code have been complied with.

이 증서는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 규칙」 A편 제19.4절에 따라 발급되었습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pursuant to section A/19.4 of the ISPS Code.

이 증서는 _____까지 유효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_____

증서의 발행장소(Issued at):

발행일자(Date of issue):

심사자 서명(signature):

지방해양수산청장 (인)

Director General of _____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대행기관의 장)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²]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6. 3. 25.>

[] 국제선박보안증서 []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재교부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한 즉시 | |
|---------|-------------------|-----------|------|---------|----|
| 신청인 | 회사 명칭 | | | 대표자 성명 | |
| | 주소 | | | | |
| | 안전관리회사
식별번호 | | | |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선박 | 선박명 | | | 총톤수 | |
| | 선박번호 | | | 용도 | |
| | 선박식별번호
(IMO번호) | | | 선적항 | |
| 기존 증서번호 | | 재교부 신청 사유 | | | 비고 |
| | | | |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
|----------|--|--------|
| 첨부
서류 | 1.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가.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 사유서
나. 국제선박보안증서가 훼손된 경우 그 훼손된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의 원본. 다만, 선박이 국외에서 운항 중이어서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되,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
가.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원본. 다만, 선박이 국외에서 운항 중이어서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되,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검토 | → | 결재 | → | 교부 |
| 신청인 | | | | 지방해양수산청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6. 3. 25.>

국제선박보안증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 | | |
|------------------|-------------------|------|------|-------------------|--|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2일 | |
| 신청인 | 사업장 명칭 | | | 대표자 성명 | |
| | 주소 | | | | |
| | 안전관리회사
식별번호 | | | |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선박 | 선박명 | | | 총톤수 | |
| | 선박번호 | | | 선박의 용도
(항행 구역) | |
| | 선박식별번호
(IMO번호) | | | 국제선박보안
증서 유효기간 | |
| 연장신청기간 및
연장사유 | | | |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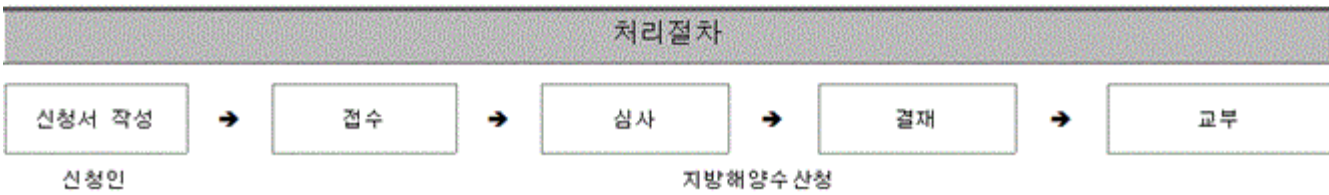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
|----------|-------------------|-----------|
| 첨부
서류 |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원본이나 사본 | 수수료
없음 |
|----------|-------------------|-----------|



[별지 제9호서식]

(표지)

관리번호: _____

선박보안기록부

(법 제15조제1항 관련)

1. 선 명:
2. 선박번호:
3. 선박식별번호(IMO번호):
4. 선박소유자 주소 및 성명:

5. 작성기간: _____년____월____일부터 _____년____월____일까지

6. 선박보안책임자: 소 속 _____

직 위 _____

성 명 _____ (서명)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속지)

선박보안기록부

[illegible]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6. 3. 25.>

선박이력기록부 [] 교 부 신청서
[] 재교부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 | | |
|------|-------------------|------|------|---------------------------|--|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교부 7일(재교부 신청의 경우 5일) | |
| 신청인 | 회사명 | | | 대표자 성명 | |
| | 주소 | | | |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선박 | 선박명 | | | 총톤수 | |
| | 선박번호 | | | 선박회사
식별번호 | |
| | 선박식별번호
(IMO번호) | | | 안전관리회사
식별번호 | |
| | 이전국적
(국적변경 시) | | | | |
| 변경내용 | | | | | |
| 변경사유 | | | |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
|----------|--|--------|
| 첨부
서류 | 1. 교부신청의 경우
가. 「선박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제총톤수증서 사본
나. 「해상교통안전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와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와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
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사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의 사본
라. 과거의 모든 선박이력기록부 사본(국제항해선박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재교부신청의 경우
가.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1) 선박이력기록부 분실 또는 훼손 사유서
2) 훼손된 경우 그 훼손된 선박이력기록부 원본. 다만, 선박이 국외에서 운항 중이어서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되,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1) 선박이력기록부 사본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로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선박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검토 | → | 결재 | → | 교부 |
| 신청인 | | | | 지방해양수산청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7. 6. 2.>

(제1쪽)

| 선박이력기록부
Continuous Synopsis Record(CSR) Document Number _____ for
the Ship with IMO Number: IMO _____ | |
|---|--|
| 기제사항(Information) | |
| 1 | 적용일자
This document applies from (date): |
| 2 | 기국
Flag State : |
| 3 | 기국등록일
Date of registration with the State indicated in 2: |
| 4 | 선박명
Name of ship: |
| 5 | 선적항
Port of registration: |
| 6 | 선박회사 명칭/주소
Name of current registered owner(s):
Registered address(es): |
| 7 | 선박회사 식별번호
Registered owner identification number: |
| 8 | 나용선인 경우 나용선주 명칭/주소
If applicable, name of current registered bareboat charterer(s):
Registered address(es): |
| 9 | 안전관리회사 명칭/본사주소/주사업장소
Name of Company (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Registered address(es):
Address(es) of its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
| 10 | 안전관리회사 식별번호
Company identification number: |
| 11 | 선급명
Name of all classification societies with which the ship is classed: |
| 12 | DOC발급기관명/발급기관과 다른 경우 심사기관명
Administration/Government/Recognized Organization which issued Document of Compliance:
Body which carried out audit (if different): |
| 13 | SMC발급기관명/발급기관과 다른 경우 심사기관명
Administration/Government/Recognized Organization which issued Safety Management Certificate:
Body which carried out audit (if different): |
| 14 | ISSC발급기관명/발급기관과 다른 경우 심사기관명
Administration/Government/Recognized Organization which issued International Ship Security Certificate:
Body which carried out audit (if different): |
| 15 | 말소등록일
Date on which the ship ceased to be registered with the State indicated in 2: |
| 16 | Remarks(비고)
(insert relevant information as appropriate). |

이 증서는 위의 모든 기록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is record is correct in all respects

발급기관/ Issued by the Administration of:
발급장소 및 발급일/ Place and date of issue:
인가자서명/ Signature of authorized person:
인가자명/ Name of authorized person:
본선 수령일 및 수령자 서명/
This document was received by the ship and attached to the ship's CSR file on the following date: _____ Signature: _____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선박이력기록부의 개정서식

(제2쪽)

Amendments to the Continuous Synopsis Record(CSR) Document
Number _____ for the Ship with IMO Number: IMO _____

| 기재사항(Information) | |
|-------------------|--|
| 1 | 적용일자
This document applies from (date): |
| 2 | 기국
Flag State: |
| 3 | 기국등록일
Date of registration with the State indicated in 2: |
| 4 | 선박명
Name of ship: |
| 5 | 선적항
Port of registration: |
| 6 | 선박회사 명칭/주소
Name of current registered owner(s):
Registered address(es): |
| 7 | 선박회사 식별번호
Registered owner identification number: |
| 8 | 나용선인 경우 나용선주 명칭/주소
If applicable, name of current registered bareboat charterer(s):
Registered address(es): |
| 9 | 안전관리회사 명칭/본사주소/주사업장소
Name of Company (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Registered address(es):
Address(es) of its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
| 10 | 안전관리회사 식별번호
Company identification number: |
| 11 | 선급명
Name of all classification societies with which the ship is classed: |
| 12 | DOC발급기관명/발급기관과 다른 경우 심사기관명
Administration/Government/Recognized Organization which issued Document of Compliance:
Body which carried out audit (if different): |
| 13 | SMC발급기관명/발급기관과 다른 경우 심사기관명
Administration/Government/Recognized Organization which issued Safety Management Certificate:
Body which carried out audit (if different): |
| 14 | ISSC발급기관명/발급기관과 다른 경우 심사기관명
Administration/Government/Recognized Organization which issued International Ship Security Certificate:
Body which carried out audit (if different): |
| 15 | 말소등록일
Date on which the ship ceased to be registered with the State indicated in 2: |
| 16 | Remarks(비고)
(insert relevant information as appropriate) |

이 증서는 위의 모든 기록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is record is correct in all respects

발급자/Issued by the Company or Master: _____

발급일자/Date of issue: _____

인가자 서명/Signature of authorized person: _____

인가자명/Name of authorized person: _____

선박이력기록부 개정사항 색인목록

(제3쪽)

Index of Amendments to Continuous Synopsis Record(CSR) Document
Number ____ for the Ship with IMO Number: IMO _____

선박이력기록부가 발급된 후에 다음의 기재사항이 회사나 선장에 의해 기재되었고
선박이력기록부에 첨부되었으며 기국 정부에 통보되어진 사항들이다.

After this CSR document was issued, the following amendments to entries on
the document have been made by the Company or the master, have been
attached to the ship's CSR file and have been notified to the Administration:

| 개정 사항의 적용일자
/Date of Application of
Amendments | CSR 정보 2번~13번까지의
개정사항/Amendments to
CSR Information(2-13) | 개정사항 양식의 CSR에 첨부된 날짜/
Date Amendment Form attached to
the ship's CSR fil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NOTE: 위의 표에 추가하여 개정이력이 있는 경우 양식을 추가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
이 첫장을 1번으로 하고 이후 번호가 차례로 매겨져야 함

If more amendments are issued than allowed for in the above table, add copies of
this table as Appendices to this page. Such Appendices should be numbered
from 1 and upwards. When relevant, indicate as follows:

첨부 번호 _____이 이 쪽에 추가되었음

Appendix no: _____ has been added to this page.

(제4쪽)

기재 시 참고사항

1. 이 서식 중 제1쪽의 기재사항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외의 자가 수정·삭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박이력기록부 기재내용은 한글과 영문으로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2. 국제항해선박의 선장이나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른 선박이력기록부 기재사항 중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선박이력기록부를 재교부받을 때까지 이 서식 제2쪽의 기재사항(Information)란에 그 변경사항을 적어 그 국제항해선박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6. 3. 25.>

이의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 | | |
|------------|-----------------------------|------|--|---------|--|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7일 | |
| 신청인 | 회사명 | | | 대표자 성명 | |
| | 주소 | | | | |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선박 | 선박명 | | | 총톤수 | |
| | 선박식별번호
(IMO번호) | | | 용 도 | |
| | 선박회사
식별번호
(있는 경우만 해당) | | | 선적항 | |
| 항만당국의 처분내용 | | | | | |
| 이의신청 사유 | | | |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
|----------------|-------------------------|-----------|
| 첨부
서류 | 국제선박보안증서 사본 1부 | 수수료
없음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선박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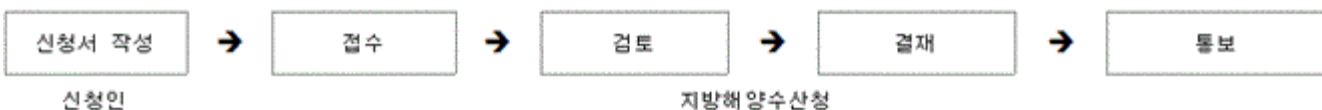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7. 6. 2.>

(앞쪽)

이의신청 조사결과 통보서

| | | | | |
|----------------|----------------------|--|----------|--|
| 신
청
인 | ① 회 사 명 | | ② 대표자 성명 | |
| | ③ 주 소 | | | |
| 선
박 | ④ 선 박 명 | | ⑤ 총 톤 수 | |
| | ⑥ 선박식별번호
(IMO 번호) | | ⑦ 선 적 항 | |
| 이의
신청
내용 | ⑧ 신청일시 | | ⑨ 신 청 인 | |
| | ⑩ 신청사유 | | | |
| ⑪ 이의신청 결과 | | |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0항 및 제1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 (인)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6. 3. 25.>

재심사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 | | |
|------------------|--------|------|--|----------|--|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14일 | |
| 신청인 | 상호(명칭) | | | 전화번호 | |
| | 대표자 성명 | | | 팩스번호 | |
| | 주소 | | | | |
| 선박 | 선박명 | | | | |
| | 총톤수 | | | | |
| | 선박의 용도 | | | | |
| 보안심사/특별점검 종류 | | | | | |
| 보안심사/특별점검 시행 기관명 | | | | | |
| 보안심사/특별점검 시행일 | | | | | |
| 재심사 신청사유 | | | | | |
| 비고 | | | |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
|----------|------------|--|
| 첨부
서류 | 재심사 신청 사유서 | 수수료 |
|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

처리절차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검토 | → | 결재 | → | 통보 |
| 신청인 | | 지방해양수산청 | | | | | | |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7. 6. 2.>

| 재심사결과 통보서 | | | | |
|---|---------------------|--|-------------|--|
| 신청인 | ① 회사명 | | ② 대표자
성명 | |
| | ③ 주소 | | | |
| 선박 | ④ 선박명 | | ⑤ 총톤수 | |
| | ⑥ 선박식별번호
(IMO번호) | | ⑦ 선적항 | |
| 재심사
내용 | ⑪ 재심사 사항 | | | |
| | ⑩ 심사 결과 | | | |
| <p>「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귀하가 재심사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사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4. 7. 24.>

항만시설보안책임자 []지정 []변경지정 통보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통보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
|-------------|-----------------|------|------|--|
| 항만시설
소유자 | 항만시설의
명칭(상호) | | 전화번호 | |
| | 대표자 성명 | | 팩스번호 | |
| | 주소 | | 홈페이지 | |

| 항만시설보안책임자 | | | | | 업무대행자
(보안담당자) |
|------------|----|------|------|--------|------------------|
| 대상
항만시설 | 부서 | 성명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성명 |
| | 직위 | 생년월일 | 팩스번호 | 전자우편 | 전화번호 |
| | | | | | |
| | | | | | |

항만시설보안책임자 변경내용 및 자격요건 확인

| | | | | | |
|----|------|--|--------|--|------|
| 현행 | 성명 | | 직위(직급) | | 지정일 |
| 변경 | 성명 | | 직위(직급) | | 지정일 |
| | 자격요건 | | 경력요건 | | 적격여부 |
| | | | 전문지식요건 | | 적격여부 |

< 비 고 >

1. 경력요건: 항만시설 운영에 종사한 경력 또는 보안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전문지식요건: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6항 각 호(제3호·제4호 및 제6호는 항만시설에 관련된 내용만 해당합니다)의 내용이 포함된 보안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은 사람
3.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는 별지에 추가로 적을 수 있습니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항만시설보안책임자로 지정(변경지정)하였으므로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 보 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210mm×297mm[백상지(80g/㎡)]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6. 3. 25.>

항만시설보안계획서 [] 승 인 신청서 [] 변경승인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14일(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7일) | |
|----------------------------------|---------|----------|---------------|--------------------------|--|
| 항만시설
소유자 | 항만시설 명칭 | | | 대표자 성명 | |
| | 주소 | | | |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대상 항만시설 | | | | | |
| 항만시설명 | 주 소 지 | 항만시설의 종류 | 항만시설의 규모 및 수량 | | |
| | | | | | |
| | | | | | |
| | | | | | |
|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 | | |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
|----------|--|--|
| 첨부
서류 | 1.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항만시설보안계획서 2부
2. 변경사유서 1부(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
|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름 |

처리절차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검토 | → | 결재 | → | 통보 |
| 신청인 | | | | 지방해양수산청 | | | | |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6. 3. 25.>

☐ 최초
항만시설 ☐ 갱신 **보안심사 신청서**
☐ 중간
☐ 임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14일 |
|------|------|----------|

| | | | | |
|-------------|---------|--|--------|--|
| 항만시설
소유자 | 항만시설 명칭 | | 대표자 성명 | |
| | 주소 | | |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항 만 시 설

| 항만시설의
명칭 | 주소지 | 항만시설의
종류, 규모
및 수량 | 항만시설 이용
선박의 용도 | 항만시설
적합확인서
유효기간 | 보안심사를
받으려는
기일 및 장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대행기관의 장

| | |
|-----|--|
| 수수료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름 |
|-----|--|

처리절차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신청인 | → | 접수 | → | 심사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보안심사대행기관 | → | 결재 | → | 적합확인서
교부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19호서식] <개정 2020. 8. 19.>

(제 1쪽)

확인서 번호

Statement No.: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항만시설적합확인서

STATEMENT OF COMPLIANCE OF A PORT FACILITY

항만시설 이름(Name of the Port Facility):

항만시설 주소(Address of the Port Facility):

이 적합확인서는 위 항만시설이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XI-2장 및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 규칙」(ISPS Code) A편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심사되고 승인된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따라 운용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아래에 표시된 선박의 이용을 위하여 이 항만시설적합확인서가 승인되었습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compliance of this port facility with the provisions of chapter XI-2 of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and part A of the International Code for the Security of Ships and of Port Facilities(ISPS Code) has been verified and that this port facility operates in accordance with the approved Port Facility Security Plan. This plan has been approved for the following:

- ☐ 여객선(Passenger ship)
- ☐ 고속여객선(Passenger high speed craft)
- ☐ 고속화물선(Cargo high speed craft)
- ☐ 산적화물선(Bulk carrier)
- ☐ 유조선(Oil tanker)
- ☐ 화학제품운반선(Chemical tanker)
- ☐ 가스운반선(Gas carrier)
- ☐ 이동식 해상 구조물(Mobile offshore Drilling Units)
- ☐ 그 밖의 화물선(Cargo ships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above)

이 항만시설적합확인서는 뒷면에 기재된 중간심사를 받는 조건으로 _____까지 유효합니다.

This Statement of Compliance is valid until _____, subject to verifications(as indicated overleaf)

증서의 발행장소(Issued at):

발행일자(Date of issue):

청장 서명(Signature):

_____지방해양수산청장(서명 또는 인)

Director General of _____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210mm×297mm[백상지(150g/㎡)]

(제2쪽)

보안심사의 표기 (ENDORSEMENT OF VERIFICATION)

대한민국정부는 이 항만시설적합확인서가 아래와 같이 중간항만시설보안심사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established that the validity of this Statement of Compliance is subject to annual verifications.

이 증서는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 규칙」(ISPS Code) B편 제16.62.4항에 따라 시행된 심사결과 이 항만시설이 협약 XI-2 및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 규칙」 A편의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during a verification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16.62.4 of the ISPS Code, the port facility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chapter XI-2 of the Convention and Part A of the ISPS Code.

첫번째 중간보안심사

1st Annual Verification)

심사자 서명(Signed)

심사장소(Place)

합격일자(Date)

Director General of _____ 지방해양수산청장 (인)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두번째 중간보안심사

2nd Annual Verification)

심사자 서명(Signed)

심사장소(Place)

합격일자(Date)

Director General of _____ 지방해양수산청장 (인)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세번째 중간보안심사

3rd Annual Verification)

심사자 서명(Signed)

심사장소(Place)

합격일자(Date)

Director General of _____ 지방해양수산청장 (인)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네번째 중간보안심사

4th Annual Verification)

심사자 서명(Signed)

심사장소(Place)

합격일자(Date)

Director General of _____ 지방해양수산청장 (인)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

Additional Verification)

심사자 서명(Signed)

심사장소(Place)

합격일자(Date)

Director General of _____ 지방해양수산청장 (인)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제3쪽)

이 확인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년 월 일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합니다.

The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28.2 of Act for the
Security of International Ships and of Port Facilities of Korea, be accepted
is valid until_____ .

심사자 서명(Signed)

장소(Place)

일자(Date)

_____지방해양수산청장 (인)
Director General of _____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개정 2020. 8. 19.>

확인서 번호
Statement No.:



대 한 민 국
Republic of Korea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 INTERIM STATEMENT OF COMPLIANCE OF A PORT FACILITY

항만시설 이름(Name of the Port Facility):
항만시설 주소(Address of the Port Facility):

이 임시적합확인서는 위 항만시설이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XI-2 장 및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 규칙」(ISPS Code) A편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심사되고 승인된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아래에 표시된 선박의 이용을 위해 이 항만시설적합확인서가 승인되었습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compliance of this port facility with the provisions of chapter XI-2 of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and part A of the International Code for the Security of Ships and of Port Facilities(ISPS Code) has been verified and that this port facility temporarily operates in accordance with the approved Port Facility Security Plan. This plan has been approved for the following:

- ☐ 여객선(Passenger ship)
- ☐ 고속여객선(Passenger high speed craft)
- ☐ 고속화물선(Cargo high speed craft)
- ☐ 산적화물선(Bulk carrier)
- ☐ 유조선(Oil tanker)
- ☐ 화학제품운반선(Chemical tanker)
- ☐ 가스운반선(Gas carrier)
- ☐ 이동식 해상 구조물(Mobile offshore Drilling Units)
- ☐ 그 밖의 화물선(Cargo ships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above)

이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는 _____까지 유효합니다.
This Statement of Compliance is valid until _____

증서의 발행장소(Issued at):
발행일자(Date of issue):

청장 서명(Signature): _____ 지방해양수산청장 (서명 또는 인)
Director General of _____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3서식] <신설 2020. 8. 19.>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

재교부 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시 | 처리기간
즉시 |
| 항만시설소유자 | 사업장명 | 대표자 성명 | |
| | 주소 | |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재교부 받으려는
항만시설적합확인서
· 임시항만시설적합
확인서 | 확인서 번호 | | |
| | 확인서 발행일자 | | |
| | 유효기간 | | |
| 재교부 사유 | (필요시 사유서 별첨 가능) |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적합확인서·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15.1
15.2
15.3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 |
|---------|--|---------|--|
| 수업
명 | | 수업
명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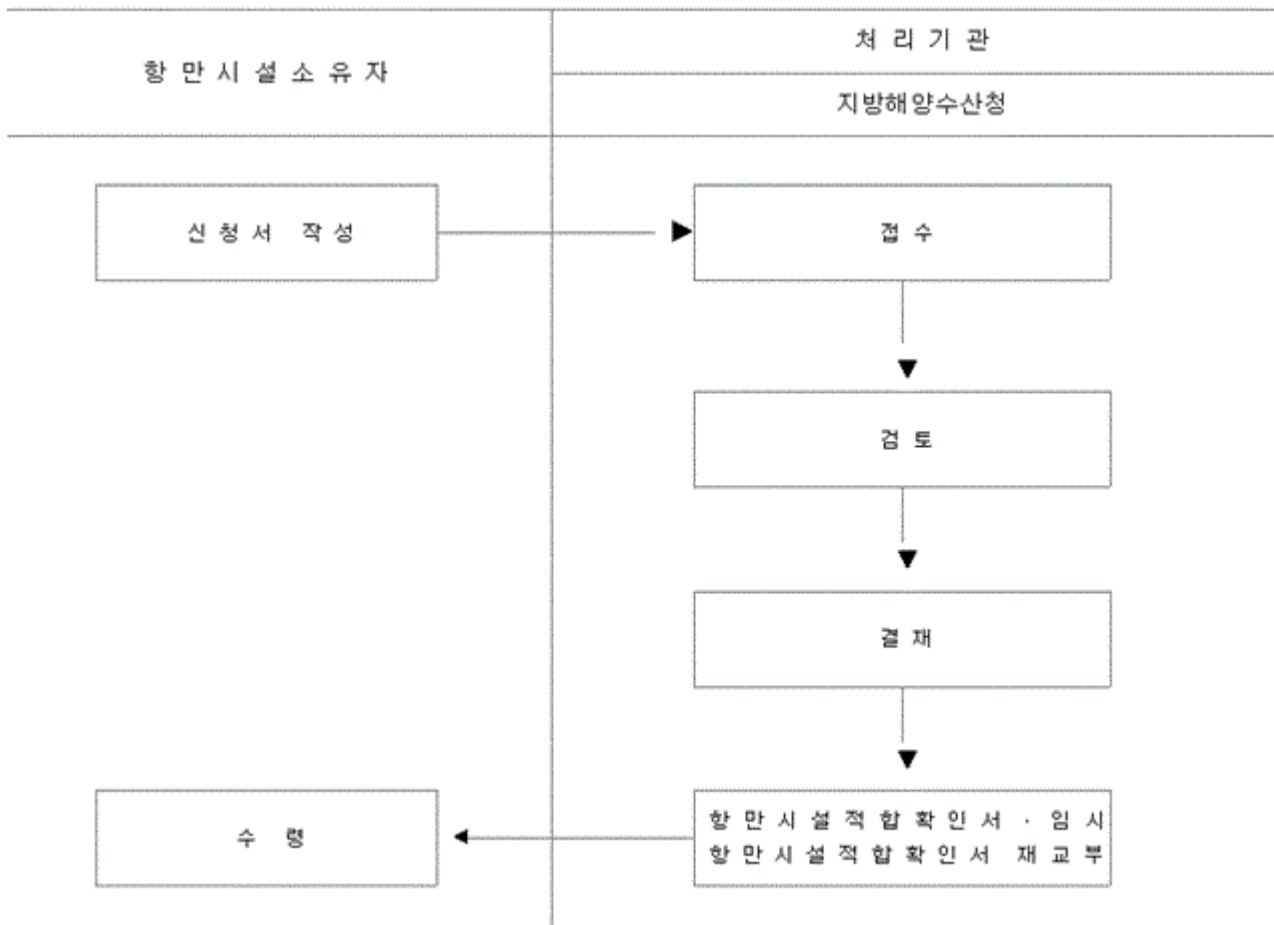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뒤쪽)

| | |
|------|---|
| 첨부서류 | 1.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가. 항만시설적합확인서·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분실 또는 훼손 사유서
나. 항만시설적합확인서·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가 훼손된 경우 그 훼손된 항만시설적합확인서·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원본 |
| | 2.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가.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항만시설적합확인서·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원본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6. 3. 25.>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 | | |
|----------------------|--------|----------|---|---------|---------|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2일 | |
| 항만시설
소유자 | 사업장 명칭 | | | 대표자 성명 | |
| | 주소 | | | | |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연장 받으려는
항만시설적합확인서 | | 확인서 번호 | | | |
| | | 확인서 발행일자 | | | |
| | | 유효기간 | 년 | 월 | 일까지 |
| 연장 신청 기간 | | 년 | 월 |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 연장 사유 | | | |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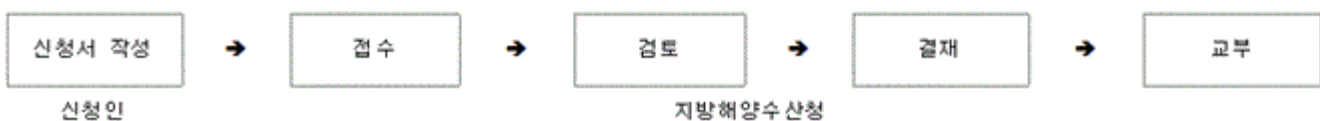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
|----------|--------------|-----------|
| 첨부
서류 |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원본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신설 2024. 7. 24.>

항만시설보안심사 불합격처분 유예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7일 | |
| 항만시설소유자 | 항만시설 명칭 | | 대표자 성명 | |
| | 주 소 | | |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항만시설적합확인서 | 항만시설 명칭 | | | |
| | 확인서 번호 | | | |
| | 확인서 발행일 | | 유효기간 | |
| 항만시설보안심사 | 심사종류 | [] 갱신 [] 중간 [] 특별 | | |
| | 심사일 | | | |
| | 지적사항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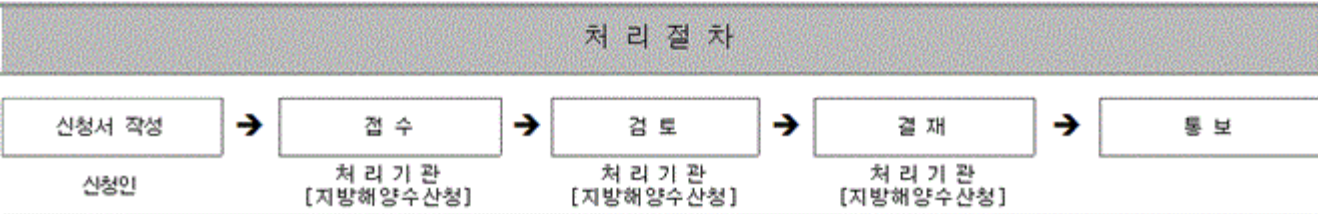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제1항에 따라 불합격처분 유예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완대책을 적은 서류
1. 해당 갱신보안심사, 중간보안심사 또는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2. 제1호에 따른 개선방안을 실행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보안상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 | 수수료 없음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1호서식]

(표지)

관리번호: _____

항 만 시 설 보 안 기 록 부
(법 제30조제1항 관련)

1. 항 만 시 설 의 명 칭:

2. 항 만 시 설 소 유 자:

3. 작 성 기 간: _____년____월____일부터 _____년____월____일까지

4. 항만시설보안책임자: 부 서 _____

직 위 _____

성 명 _____(서명)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속지)

항만시설보안기록부

[illegible]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신설 2021. 12. 9.>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
|--------------|---------------------|--------------|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신청인
(제작자)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상호(사업자 명칭) | 전자우편 |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종류 | 장비명(모델명) |
| | 제작자 | 제조국가 |
| | 시험기관 | |
| | 그 밖의 특기사항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5에 따라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장 귀하

| | |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제원표 및 시험용 물품(테스트 키트)에 관한 서류
4. 보안검색장비의 구조 및 외관도
5. 보안검색장비의 사용·운영방법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설명서
6. 보안검색장비의 사후관리를 위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7.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의4에 따른 성능 인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4에 따른 금액 |
| 인증기관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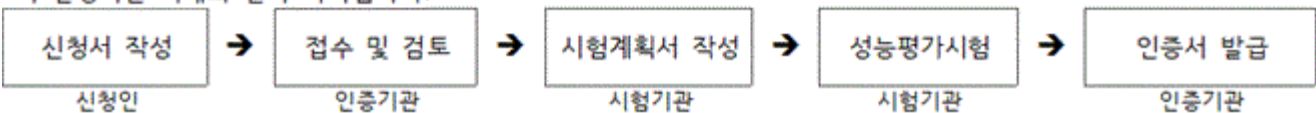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 인증기관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 인증기관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서식) <신설 2021. 12. 9.>

보안검색장비 성능시험 결과서

| | | |
|------|---------------------|--------------------------|
| 시험기관 | 발급일 | |
| 접수번호 | 발급번호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상호(사업자 명칭) | |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시험결과 | 장비 종류(모델명) | 일련번호(S/N) |
| | 제작자 | 제조국가 |
| | 시험수행일 | 발급 번호
제 호 |
| | 시험 방법 | 시험 결과
적합 [], 부적합 [] |
| | 그 밖의 특기사항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5제3항에 따라 보안검색장비 성능시험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시험기관장 직인



인증기관장 귀하

210mm × 297mm [백상지(80g/㎡)]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4서식] <신설 2021. 12. 9.>

제 호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서

1. 제작자 성명(대표자) 또는 명칭:
2. 사업장 소재지:
3. 장비 종류:
4. 장비명(모델명) 및 일련번호(S/N):
5. 장비 성능 인증 유효기간:
6. 제작자(제조국가):
7. 시험기관:

위 보안검색장비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 30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5제4항에 따라 성능 인증 기준에 적합한 장비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증기관 장 직인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5서식] <신설 2021. 12. 9.>

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
| 신청인 | 상호(법인 또는 단체) | 법인등록번호 | |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 시험업무의
수행범위 | |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0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7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3. 성능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인력, 시험설비 등을 작성한 사업계획서
4. 국제표준화기구(ISO) 또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적합한 품질관리 규정
5.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의7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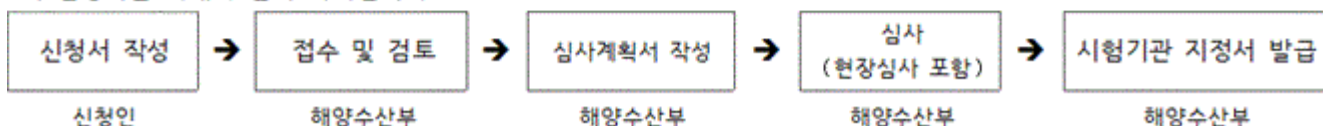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 × 297mm [백상지(80g/㎡)]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6서식] <신설 2021. 12. 9.>

제 호

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서

1.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2. 대표자:
3. 소재지:
4. 업무 수행 범위: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0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7제4항에 따라 위 기관을 시험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7서식] <개정 2021. 12. 9.>

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알록)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시 | 처리기간
30일 |
| 항만시설소유자 | 사업장명 | 대표자 성명 | |
| | 주소 | |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수탁업체 | 사업장명 | 대표자 성명 | |
| | 주소 | |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수탁업무의 범위 | |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 허가증
2. 특수경비원의 명단 및 해당 인력의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이수증
3. 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 추천서 | 수수료
없음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1. 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의 사업자등록증명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수탁업체 작성)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업체에서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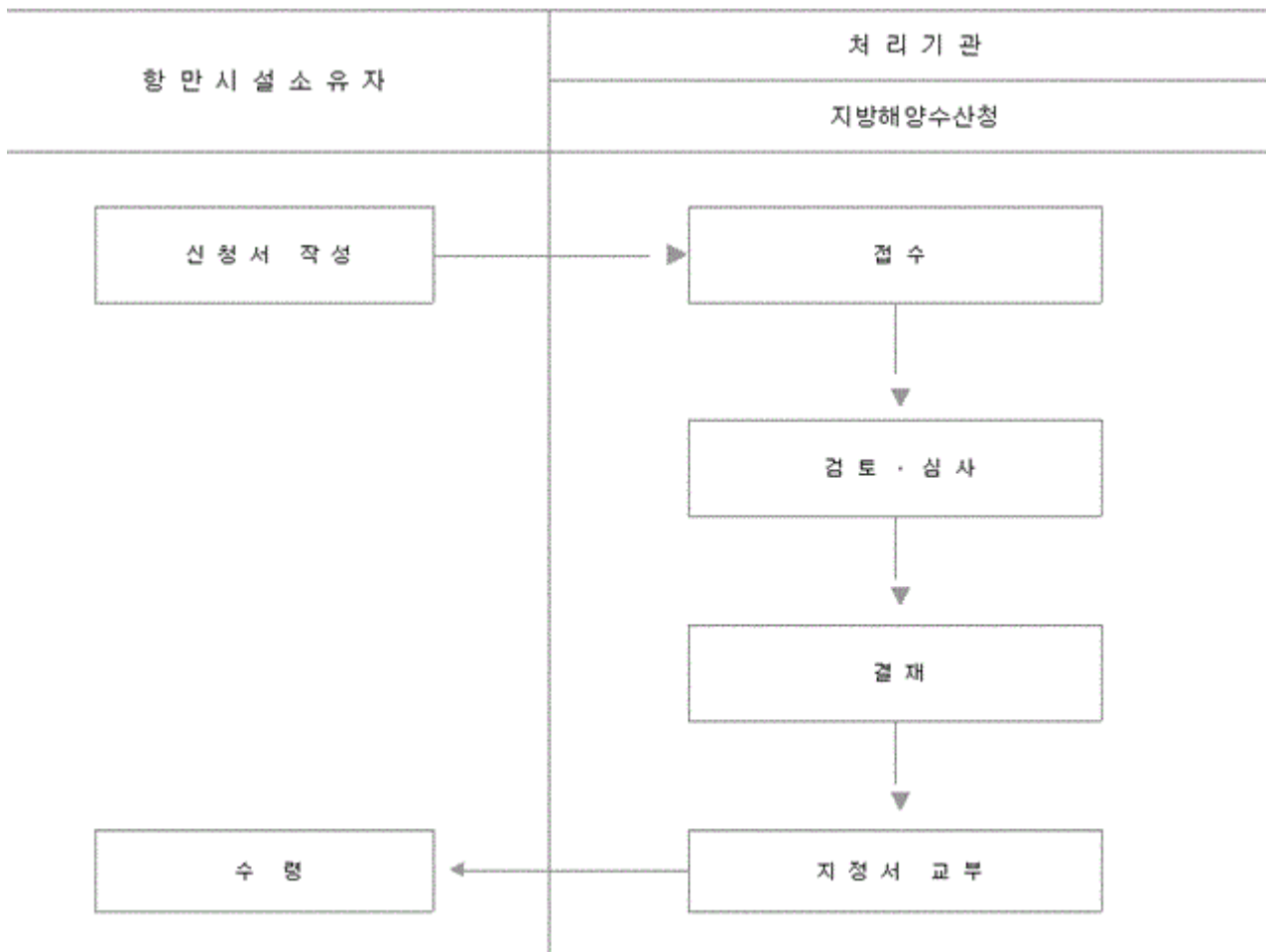
수탁업체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21호의 8서식] <개정 2021. 12. 9.>

발급번호 ○○지방해양수산청 제 호

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서

| | | |
|-----------------|---------|--|
| 항만시설소유자 | 상호(법인명) | |
| | 주소 | |
| 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 | 상호(법인명) | |
| | 성명(대표자) | |
| | 주소 | |
| | 전화번호 | |
| 수탁업무 | | |
| 지정기간 |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위 항만시설의 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m²)]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9서식] <개정 2021. 12. 9.>

폐쇄회로 텔레비전 점검기록부

| | | | | |
|---------------------------------------|---------------------------------------|---------------------------|---------|----|
| 점 검 일 자 | 년 월 일 | | | |
| 시 설 명 | | | | |
| 점 검 내 용 | | | | |
| 구 분 | 내 용 | 결 과
(정상 : ○
불량 : ×) | 고장/정비내용 | 비고 |
| 기기점검
(카메라, 제어부,
모니터, 녹화장치
등) | 영상표출, 녹화상태 | | | |
| | 작동상태 | | | |
| | 기능설정상태 | | | |
| | 외관 및 설치상태 | | | |
| | 전원공급상태 | | | |
| | 영상정보 보호를 위
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상태 | |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4제2항제4호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작동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 구분란은 열람, 제3자 제공, 이용, 파기 중 해당사항 기재

[illegible]210mm×297mm[백상지(80g/m²)]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1. 6. 30.>

| | | | | | |
|--|--------|----------------------------------|--------|-----------|----------|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항만시설</div> <div> ☐ 보안사건발생보고서
 ☐ 보안정보제공서 </div> </div> | | | | | |
| 보고
(제공)
자 | ① 회사명 | | | ② 대표자 성명 | |
| | ③ 주소 | | | | |
| | ④ 전화번호 | | ⑤ 팩스번호 | | |
| 항만시설 개요 | | | | | |
| ⑥ 항만시설(부두)명 | | ⑦ 선석(선박을 매어두는 위치)의 규모
(DWT×척) | | ⑧ 주요 취급화물 | ⑨ 이용 선박명 |
| | | | | | |
| 보 고 내 용 | | | | | |
| ⑩ 사유발생일시 및
장소(선박) | | ⑪ 정보보고 내용(육하 원칙에 의함) | | | |
| | | | | | |
| <p>「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시설 보안사건(보안정보)을 보고(제공)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보고(제공)자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right;">[인 () -]</p> <p style="text-align: center;">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 귀하</p> <p style="text-align: center;">(국 가 보 안 기 관 의 장)</p>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신설 2024. 7. 24.>

항만시설 촬영결과물 발간·복제·배포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 | | |
|---------|---------|---------------------------|--|------|----|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7일 |
| 신청인 | 성명(기관명) | | | 생년월일 | |
| | 주소(소재지) | | | 전화번호 | |
| | 구분 | [] 발간 [] 복제 [] 배포(재배포) | | | |
| 해당 항만시설 | | | | | |
| 목적 | | | | | |

항만시설 촬영결과물

| | | | | | |
|--------|--|--|--|--|--|
| 내용 | | | | | |
| 형태/수량 | [] 책자 [] 사진 [] 동영상 [] 그 밖의 형태() | | | | |
| | 수량 | | | | |
| 경로/배포처 | [] 출판 [] 방송 [] 정보통신망 [] 그 밖의 경로() | | | | |
| | 배포처 | | |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 촬영결과물 발간·복제·배포 허가를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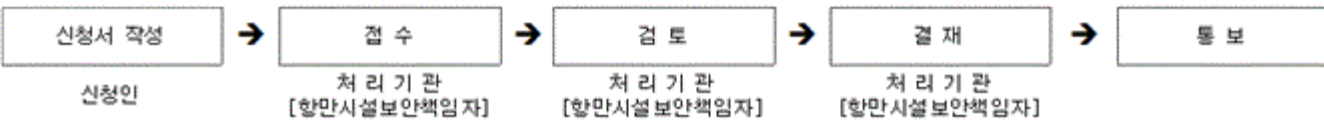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항만시설보안책임자 귀하

| | | |
|-----|----------------------|--------|
| 첨부물 | 발간·복제 또는 배포하려는 촬영결과물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3서식] <신설 2024. 7. 24.>

드론 비행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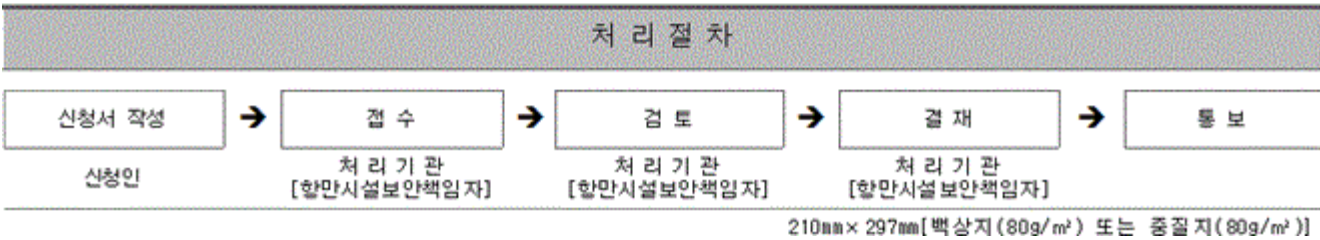
| | | | | | |
|------|-------------|------|--|-------|----|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7일 |
| 신청인 | 성명(기관명) | | | 생년월일 | |
| | 주소(소재지) | | | 전화번호 | |
| 드론 | 종류 | | | 형식 | |
| | 자체무게 | 길이 | | 이착륙형식 | |
| | 성능 | 운용한계 | | 조작방법 | |
| | 신고번호 | | | 제작번호 | |
| 비행계획 | 일시 | | | | |
| | 비행 장소(항만시설) | | | 조종 장소 | |
| | 비행 목적 | | | | |
| | 비행 방법 | | | 비행 횟수 | |
| | 경로/고도 | | | | |
| 조종자 | 성명 | | | 생년월일 | |
| | 주소 | | | 전화번호 | |
| | 자격번호 | | |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4제1항에 따라 드론 비행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항만시설보안책임자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드론 비행에 관한 안전관리 대책을 적은 서류
2. 드론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피해자 보호대책을 적은 서류 | 수수료 없음 |
|------|---|--------|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1. 6. 30.>

(앞쪽)

Declaration of Security (보안합의서)

Name of Ship(선박명): _____

Port of Registry(선적항): _____

IMO Number(IMO번호): _____

Name of Port Facility(항만시설명): _____

이 보안합의서는 아래의 보안등급 하에서 _____ 부터 _____ 까지 다음의 활동에 대하여 유효합니다.

This Declaration of Security is valid from _____ until _____ for the following activities _____.

Security Levels(보안등급): _____

Ship Security Level(선박보안등급): _____

Port Facility Security Level(항만보안등급): _____

선박 및 항만시설은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의 요건에 적합함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보안조치 및 책임에 대하여 상호 동의합니다.

The port facility and ship agree to the following security measures and responsibilities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Part A of the International Code for the Security of Ships and of Port Facilities.

선박보안책임자 또는 항만시설보안책임자는 아래 내용 중 해당 활동사항에 대하여 각각 표시하여야 합니다.

The affixing of the initials of the SSO or PFSO under these columns indicates that the activity will be done, in accordance with relevant approved plan, by _____.

| Activity(보안활동) | The port facility:
(항만시설) | The ship:
(선박) |
|---|------------------------------|-------------------|
| 모든 보안활동 업무에 대한 시행의 확인
Ensuring the performance of all security duties | | |
| 제한구역에 대해 접근을 허용 받은 자만이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감시
Monitoring restricted areas to ensure that only authorized personnel have access | | |
| 항만시설에 대한 접근 통제
Controlling access to the port facility | | |
| 선박에 대한 접근 통제
Controlling access to the ship | | |
| 선박주변지역을 포함하는 항만시설에 대한 감시
Monitoring of the port facility, including berthing areas and areas surrounding the ship | | |
| 선박주변지역을 포함하는 선박에 대한 감시
Monitoring of the ship, including berthing areas and areas surrounding the ship | | |
| 화물의 취급
Handling of cargo | | |
| 선용품의 인도
Delivery of ship's stores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쪽)

| | | |
|---|--|--|
| 위탁 수화물의 취급
Handling unaccompanied baggage | | |
| 사람과 그들 물품의 탑승 통제
Controlling the embarkation of persons and their effects | | |
| 항만시설과 선박 간 보안통신이 즉시 사용 가능한 것에 대한 보증
Ensuring that security communication is readily available between the ship and port facility | | |

이 합의서의 서명자들은 해당 선박 및 해당 항만에 대한 보안조치 및 계획이 특정활동 동안 각자의 승인계획 또는 동의한 특정 합의사항에 이미 명확하게 기록되어 첨부된 부속서에 마련된 규정에 따라서 시행될 협약 제11-2장 및 코드 A편의 규정에 이의가 없음을 증명합니다.

The signatories to this agreement certify that security measures and arrangements for both the port facility and the ship during the specified activities meet the provisions of chapter XI-2 and Part A of Code that will be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already stipulated in their approved plan or the specific arrangements agreed to and set out in the attached annex.

Dated: _____ on the _____

| | |
|--|-------------------|
| Signed for and on behalf of (대리 서명) | |
| the port facility(항만시설): | the ship(선박): |
| Name and title of person who signed (서명자 직책 및 이름) | |
| Name(이름): | Name(이름): |
| Title(직책): | Title(직책): |
| Contact Details (구체적인 연락방법)
(전화번호 혹은 무선주파수 등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기술) | |
| for the port facility(항만시설): | for the ship(선박): |

Port Facility(항만시설):

Port Facility Security Officer(항만시설보안책임자):

Master(선장): _____

Ship Security Officer(선박보안책임자):

Company(회사): _____

Company Security Officer(총괄보안책임자):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서식] <개정 2023. 6. 30.>

내부보안심사자 지정 통보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통보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
| 항만시설소유자 | 사업장명 | 대표자 성명 | |
| | 주 소 | |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항만시설보안책임자 | 부 서 | 성 명 | 전화번호 |
| | 직 위 | 생년월일 | 휴대전화번호 |

내부보안심사자

| | | | | |
|---------|-----|------|------|--------|
| 대상 항만시설 | 부 서 | 성 명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직 위 | 생년월일 | 팩스번호 | 전자우편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부보안심사자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는 별지첨부가 가능합니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5항에 따라 위 사람을 위 항만시설의 내부보안심사자로 지정하였으므로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 보 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210mm × 297mm [백상지 (80g/m²)]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6. 3. 25.>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 | | |
|----------|--------|------|------|----------|--|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 명칭(상호) | | | | |
| | 대표자 성명 | | | | |
| | 주소 | | | |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대행업무의 범위 | | | |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
|-------------------|---|--------|
| 첨부
서류 |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보안심사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3. 보안심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보안심사에 관한 내부규정
4. 그 밖에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처리절차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검토 | → | 결재 | → | 교부 |
| 신청인 | | | | 해양수산부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0. 8. 19.>

| | |
|--|--|
|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서 | |
| ① 기 관 명 | |
| ② 대 표 자 | |
| ③ 소 재 지 | |
| ④ 업무범위 | |
| <p>「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안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해 양 수 산 부 장 관 (인)</p> |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6. 3. 25.>

보안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
| 신청인 | 명칭(상호) | | |
| | 대표자의 성명 | | |
| | 주소 | |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
|----------------|--|--------|
| 첨부
서류 | 1. 보안교육기관의 시설 등의 소유에 관한 증명서류(전세 또는 임대인 경우 계약서 사본)
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4조의 보안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안교육 시행계획서 | 수수료 없음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처리절차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검토 | → | 결재 | → | 교부 |
| 신청인 | | | | 해양수산부 |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3.3.24>

제 호

보안교육기관 지정서

① 교육기관의 명칭

② 교육기관 소재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안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인)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6. 3. 25.>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 [] 승 인 신청서 [] 변경승인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30일 | |
|--------------------------------|--------|---------------|---------------------------|---------------------------------|--------------|
| 신청인 | 명칭(상호) | | | | |
| | 대표자 성명 | | | | |
| | 주소 | | | | |
| 대상
항만시설 | 항만명 | 항만시설
(부두)명 | 선석(선박을
매어두는 위치)의
규모 | 항만시설(부두)
면적(m ²) | 주요 취급
화물명 |
| | | | | | |
| 항만보안 인력·시설·장비
확보에 투입된 비용(원) | | (필요시 상세내역 첨부) | | | |
| 징수방법 | | | | | |
|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 | | (필요시 상세내역 첨부) | |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
|----------|---|-----------|
| 첨부
서류 | 1. 세금계산서(보안시설 및 장비를 구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계약서 사본(보안시설 및 장비를 구입하거나 경비인력 확보를 위하여 경비업체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보수명세서 사본(경비인력을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4. 항만시설 보안료의 수지계 산서
5.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변경 전·후 대비표(징수요율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항만시설 보안료 사용계획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해양경비법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948호, 2025. 4. 22.,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해양영역인식과) 032 - 835 - 2362

해양경찰청 (경비작전과) 032 - 835 - 224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비수역에서의 해양안보 확보, 치안질서 유지,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 보호를 위하여 해양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4. 1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4. 18., 2017. 7. 26., 2020. 12. 29., 2025. 4. 22.>

1. “해양경비”란 해양경찰청장이 경비수역에서 해양주권의 수호를 목적으로 행하는 해양안보 및 해양치안의 확보,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의 보호를 위한 경찰권의 행사를 말한다.
2. “경비수역”이란 대한민국의 법령과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권리가 미치는 수역으로서 연안수역, 근해수역 및 원해수역을 말한다.
3. “연안수역”이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 및 제3조에 따른 영해 및 내수(「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4. “근해수역”이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의2에 따른 접속수역을 말한다.
5. “원해수역”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 중 연안수역과 근해수역을 제외한 수역을 말한다.
6. “해양수산자원”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양수산자원을 말한다.
7. “해양시설”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을 말한다.
8. “경비세력”이란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비를 목적으로 투입하는 인력, 함정, 항공기 및 전 기통신설비 등을 말한다.
9. “해상검문검색”이란 해양경찰청장이 경비세력을 사용하여 경비수역에서 선박등을 대상으로 정선(停船) 요구, 승선(乘船), 질문, 사실 확인, 선체(船體) 수색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10. “선박등”이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그 밖에 수상에서 사람이 탑승하여 이동 가능한 기구를 말한다.
11. “임해 중요시설”이란 바다와 인접하고 있는 공공기관, 공항, 항만, 발전소, 조선소 및 저유소(貯油所) 등 국민경제의 기간(基幹)이 되는 주요 산업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설을 말한다.

12. “해양경비정보”란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경비수역 내의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경비수역 및 경비세력 등에 관한 정보

나. 선박등의 운항 및 보안·안전에 관한 정보(선박등의 위치, 입항·출항, 승선원 및 화물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

다. 해양시설, 임해 중요시설 등의 보안·안전에 관한 정보

라. 해양에서 수집한 영상·음성·음향·전기통신데이터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처리·가공·활용된 정보

마. 수심·조류(潮流)·해양기상 등 해양 특성과 해저자원, 해양수산자원 등에 관한 정보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정보를 결합·융합·분석·가공하여 생성된 정보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경비수역에서의 해양안보 및 해양치안을 확보하고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양경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확립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등이나 해양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경비수역에 있는 선박등이나 해양시설

2. 경비수역을 제외한 수역에 있는 「선박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해양경비에 관하여 「통합방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해양경비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4. 5. 20.>

제5조의2 삭제 <2019. 8. 20.>

제2장 해양경비 활동

제6조(해양경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경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정세의 변화에 따른 해양치안 수요 분석에 관한 사항

2. 해양치안 수요에 따른 경비세력의 운용방안 및 국제공조에 관한 사항

3. 경비세력 증감에 대한 전망 및 인력·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4. 경비수역별 특성에 알맞은 경비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경비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9.>

④ 해양경찰청장은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전년도 해양경비 실적이나 치안여건 등을 분석하여 해당 연도의 중점 경비대상과 달성목표 등을 포함한 연간 해양경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7조(해양경비 활동의 범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경비 활동을 수행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4. 18., 2017. 7. 26.>

1. 해양 관련 범죄에 대한 예방
2. 해양오염 방제 및 해양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조치
3. 해상경호, 대(對)테러 및 대간첩작전 수행
4. 해양시설의 보호에 관한 조치
5. 해상항행 보호에 관한 조치
6. 그 밖에 경비수역에서 해양경비를 위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제7조의2(해양경비정보의 수집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해양경비정보를 수집·관리 및 활용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양경비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는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정보의 수집·관리 및 분석을 위하여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해양경비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경비정보의 수집·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4. 22.]

제8조(권한남용의 금지) 해양경찰관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권한을 남용하여 개인의 권리 및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9조(국제협력) ① 해양경찰청장은 국제협력을 위한 국가 간 합동훈련 및 구호활동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세력의 일부를 외국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

② 해양경찰청장은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용도폐지된 함정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③ 제2항에 따른 양여 대상 개발도상국의 선정 기준과 방법 및 구체적인 양여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2. 3.>

[제목개정 2019. 12. 3.]

제10조(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 활동과 관련하여 긴급한 사안이 있을 경우 신속한 정보의 수집·전파 등 업무협조를 위하여 외교부, 해양수산부 및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경비수역별 중점 경비사항) ① 해양경찰청장은 경비수역의 구분에 따라 경비세력의 배치와 중점 경비사항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중점 경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4. 18.>

1. 연안수역: 해양 관계 국내법령을 위반한 선박등의 단속 등 민생치안 확보 및 임해 중요시설의 보호 경비
2. 근해수역: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6조의2에 따른 법령을 위반한 외국선박의 단속을 위한 경비
3. 원해수역: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의 보호,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해양과학조사 실시 등에 관한 국내법령 및 대한민국이 체결·비준한 조약을 위반한 외국선박의 단속을 위한 경비

제12조(해상검문검색) ① 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 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등에 대하여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검문검색은 대한민국이 체결·비준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5. 4. 22.>

1. 다른 선박의 항행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진로 등 항행상태가 일정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항법을 이탈하여 운항되는 선박등
2. 대량파괴무기나 그 밖의 무기류 또는 관련 물자의 수송에 사용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등
2의2.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금지물품의 수송에 사용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등
3. 국내법령 및 대한민국이 체결·비준한 조약을 위반하거나 위반행위가 발생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등

② 해양경찰관은 해상검문검색을 목적으로 선박등에 승선하는 경우 선장(선박등을 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소속, 성명, 해상검문검색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4. 11. 19., 2017. 7. 26.>

제13조(추적·나포) 해양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등에 대하여 추적·나포(拿捕)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추적권의 행사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11조에 따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제12조에 따른 해상검문검색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선박등
2. 해당 경비수역에서 적용되는 국내법령 및 대한민국이 체결·비준한 조약을 위반하거나 위반행위가 발생하려 하고 있다고 확실시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선박등

제14조(해상항행 보호조치 등) ① 해양경찰관은 경비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선박등의 선장에 대하여 경고, 이동·해산 명령 등 해상항행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항행 보호조치는 연안수역에서만 실시한다. <개정 2013. 8. 13., 2014. 11. 19., 2017. 7. 26.>

1. 선박등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선박등의 항행 또는 입항·출항 등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행위
2. 선박등이 항구·포구 내외의 수역과 지정된 항로에서 무리를 지어 장시간 점거하거나 항법상 정상적인 횡단방법을 일탈하여 다른 선박등의 항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임해 중요시설 경계 바깥쪽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경비수역에서 선박등이 무리를 지어 위력적인 방법으로 항행 또는 점거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행위

② 해양경찰관은 경비수역(이 항에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수역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선박등이 좌초·충돌·침몰·파손 등의 위험에 처하여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나 중대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또는 해양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그 선박등의 선장에 대하여 경고, 이동·피난 명령 등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안전조치는 연안수역에서만 실시한다. <신설 2013. 8. 13., 2014. 11. 19., 2015. 2. 3., 2017. 7. 26.>

1. 태풍, 해일 등 천재(天災)
2. 위험물의 폭발 또는 선박의 화재
3. 해상구조물의 파손

③ 해양경찰관은 선박등의 통신장치 고장 등의 사유로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거나 선박등의 선장이 제2항에 따른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로서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 중대한 재산상 손해 또는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2014. 11. 19., 2017. 7. 26.>

1. 선박등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조치

2. 선박등의 선장, 해원(海員) 또는 승객을 하선하게 하여 안전한 곳으로 피난시키는 조치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해양경찰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선박등의 선장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조치의 목적·이유 및 이동·피난 장소를 알려야 한다. 다만, 기상상황 등으로 선박에 승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신분 고지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2014. 11. 19., 2017. 7. 26.>

⑤ 해양경찰서장은 제3항제1호에 따른 이동조치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등의 소유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2014. 11. 19., 2017. 7. 26.>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7. 7. 26.>

[제목개정 2013. 8. 13.]

제15조(지원요청)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해양경비 활동 중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행정기관에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해양경비 교육훈련)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함정 승조원 및 항공요원 등 경비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함정·항공기 등을 이용한 종합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16조의2(해양 대테러 계획의 수립)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7조제3호에 따른 대테러작전의 수행 및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0조에 따른 테러예방대책의 원활한 수립과 해양에서의 효율적인 테러 예방·대응을 위하여 5년마다 해양 대테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 대테러 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해양 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양 대테러 계획 및 제2항에 따른 해양 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3장 무기 및 장비 등의 사용

제17조(무기의 사용) ① 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 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무기사용의 기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 4에 따른다. <개정 2014. 5. 20., 2014. 11. 19., 2017. 7. 26.>

1. 선박등의 나포와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경우

2. 선박등과 범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3.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4.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을 억제하기 위한 경우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화기(個人火器) 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1. 대간첩·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선박등과 범인이 선체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경비세력을 공격하거나 공격하려는 경우
 3. 선박등이 3회 이상 정선 또는 이동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세력에게 집단으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

제18조(해양경찰장비 및 장구의 사용) ① 해양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2014. 11. 19., 2017. 7. 26.>

1. 해상검문검색 및 추적·나포 시 선박 등을 강제 정선, 차단 또는 검색하는 경우 경비세력에 부수되어 운용하는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
 2. 선박등에 대한 이동·해산 명령 등 해상항행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 외에 정당한 직무수행 중 경비세력에 부당하게 저항하거나 위해를 가하려 하는 경우 경비세력의 자체 방호를 위한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
- ② 제1항에 따른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의 종류 및 사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7. 7. 26.]

제4장 보칙

제19조(협조요청) 해양경찰청장은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경비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5. 4. 22.>

제20조(경비수역 내 점용·사용허가 등의 통보) ①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경비수역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경비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9.>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경비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 29.>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어항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경비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 면허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를 하는 경우 제7조 각 호에 따른 해양경비 활동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8. 27., 2022. 1. 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통보 사항 및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20조의2(포상) 해양경찰청장은 제13조에 따라 외국선박을 나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7. 4. 18.]

제20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5. 4. 22.]

제5장 벌칙

제21조(벌칙)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7. 4. 18.>

② 제14조에 따른 이동·해산·피난 명령 또는 이동·피난 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3. 8. 13., 2017. 4. 18.>

제22조 삭제 <2017. 4. 18.>

부칙 <제11372호, 2012. 2.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3>까지 생략

<674>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를 “외교부,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20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7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810호, 2013. 5. 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90호, 2013. 8. 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00호, 2014. 5. 20.>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각각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한다.

부칙 <제12844호, 2014. 11. 1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5>까지 생략

<246>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8호、제9호, 제6조제1항、제3항、제4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6조, 제19조 및 제22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의 제목 “(해양경찰의 날)”을 “(해양경비안전의 날)”로 하고, 같은 조 중 “해양경찰”을 “해양경비안전”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관”을 각각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및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4조제6항 및 제20조제5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해양경찰관서”를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해양경찰장비 및 장구의 사용)”을 “(경찰장비 및 장구의 사용)”으로 한다.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247>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186호, 2015. 2.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개항질서법」에 따른 개항의항계안등”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한다.

⑨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4804호, 2017. 4. 18.> (해양수산물발전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해양자원”을 “해양수산자원”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해양자원”을 “해양수산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해양수산자원”이란 「해양수산물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양수산자원을 말한다.

제3조, 제7조제2호 및 제11조제2항제3호 중 “해양자원”을 각각 “해양수산자원”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 <제14810호, 2017. 4.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4>까지 생략

<285>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8호, 제9호, 제6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6조, 제19조,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2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조의2의 제목 “(해양경비안전의 날)”을 “(해양경찰의 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해양경비안전의 날”을 “해양경찰의 날”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이하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각각 “해양경찰관”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및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14조제6항 및 제20조제5항 중 “총리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를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경찰장비 및 장구의 사용)”을 “(해양경찰장비 및 장구의 사용)”으로 한다.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4810호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2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8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515호, 2019. 8. 20.> (해양경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제16568호, 2019. 8. 27.> (양식산업발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 면허”를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 면허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로 한다.

<58>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6701호,2019. 12. 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02호,2020. 1. 29.> (항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 「항만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의 신설·개축(改築)·유지·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를 ” 을 “ 「항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을 ” 로 한다.

<53>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7798호,2020. 12. 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55호,2022. 1. 11.> (수산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3# 까지 생략

3\$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 「수산업법」 제8조 ” 를 “ 「수산업법」 제7조 ” 로 한다.

3%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 <제20948호,2025. 4.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경비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해양경찰청 (해양영역인식과) 032 - 835 - 2362

해양경찰청 (국제협력관) 032 - 835 - 2289

해양경찰청 (경비작전과) 032 - 835 - 2241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해 중요시설의 범위) 「해양경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해양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3. 29., 2017. 7. 26.>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2. 「공항시설법」에 따른 비행장 및 공항
3. 「항만법」에 따른 항만 및 항만시설
4. 발전소·조선소·제철소 및 저유소(貯油所) 등 국가기간(基幹) 산업시설

제2조의2(해양경비정보의 수집·관리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경비정보를 수집·관리 및 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해양경비정보의 수집·관리 및 활용 목적을 명확히 할 것
2. 해양경비정보의 수집·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적절한 체계를 둘 것
-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이하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관리 및 활용과 정보보안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해양경비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단체의 임직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경비정보의 수집·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0. 10.]

제3조(경비세력의 해외파견)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경비세력을 외국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3. 3.>

제3조의2(용도폐지된 합정의 양여)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양여 대상 개발도상국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개발도상국과 해양안전, 외교,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협력가능성
 2. 해당 개발도상국의 함정 관리, 운용 역량
 - ② 제1항에 따라 양여 대상 개발도상국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0.>
 1. 재정경제부장관
 2. 외교부장관
 3. 국방부장관
 4. 방위사업청장
 5.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협의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개발도상국과 양여 대상 함정의 명세, 함정의 운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서면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여 전 함정의 정비에 관한 사항 등 용도폐지된 함정의 양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본조신설 2020. 3. 3.]

제4조(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해양경찰청에 설치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해양경비 활동과 관련된 긴급 대책의 협의에 관한 사항
 2. 관계 기관 간 신속한 정보 교류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외국과의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한 긴급한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긴급한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양경찰청 경비국장이 되며,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외교부
 2. 삭제 <2013. 3. 23.>
 3. 해양수산부
 4. 경찰청
 5. 해양경찰청
 6. 그 밖에 해양경비와 관련된 업무협조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4조의2(사고예방조치) 법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9. 26.>

1. 선박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선박등에 승선하는 조치
 2. 그 밖에 선박등의 안전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긴급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 [본조신설 2014. 2. 5.]

제4조의3(이동조치 비용 부담) 법 제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등”이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동원한 선박·크레인, 그 밖의 장비 등(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이동조치된 선박등을 말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9. 26.>

[본조신설 2014. 2. 5.]

제5조(경찰장비·경찰장구의 종류 및 사용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5.>

1. 경찰장비: 소화포(消火砲)
 2. 경찰장구: 페인트볼 및 투색총(줄을 쏘도록 만든 특수총을 말한다)
-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용할 것
 2.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것
 3.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危害)를 최소화할 것

제5조의2(포상의 방법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외국선박을 나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표창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9. 26.]

제6조 삭제 <2017. 9. 26.>

부칙 <제24040호, 2012. 8. 13.>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57호, 2013. 3. 23.>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해양경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교부
3. 해양수산부

부칙 <제25153호, 2014. 2. 5.>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53호, 2014. 11. 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 까지 생략

3@ 해양경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제4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제4조의2제2호, 별표 제1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민안전처

5. 경찰청

제4조의2제1호 중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의3 중 “해양경찰관”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3# 생략

부칙 <제27972호, 2017. 3. 29.>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 까지 생략

4# 해양경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4\$ 및 4%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8217호, 2017. 7. 26.>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해양경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제4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4조의2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국장”을 “해양경찰청 경비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경찰청

5. 해양경찰청

제4조의2제1호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의3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해양경찰관”으로 한다.

별표 제1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28344호, 2017. 9.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외국선박을 나포하는 데 공로를 세운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508호, 2020. 3. 3.>

이 영은 2020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80호,2021. 1. 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5816호,2025. 10. 10.>

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47호,2025. 12. 30.> (재정경제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3>까지 생략

<294> 해양경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295>부터 <313>까지 생략

■ 해양경비법 시행령 [별표] 삭제 <2017. 9. 26.>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6. 4. 20.] [해양수산부령 제793호, 2026. 4. 20.,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해양영역인식과) 032 - 835 - 2362

해양경찰청 (경비작전과) 032 - 835 - 22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선 요구의 방법) 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은 「해양경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상검문검색을 위해 선박등에 대하여 정선 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신호기 엘(L)의 계양
 2.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사이렌, 뱃고동, 그 밖의 음향신호에 의한 엘(L)의 신호(단음 1회, 장음 1회, 단음 2회를 7초 간격으로 계속하는 신호를 말한다)
 3.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투광기에 의한 엘(L)의 신호(단광 1회, 장광 1회, 단광 2회를 7초 간격으로 계속하는 신호를 말한다)
 4. 마이크로폰 또는 육성(肉聲)
 5. 무선통신
 6. 항공기가 선박등의 상공에서 선회하거나 조명탄 또는 연막탄 투하
- ② 제1항에서 “단음” 또는 “단광”이란 1초간 계속 소리를 울리거나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하며, “장음” 또는 “장광”이란 3초간 계속 소리를 울리거나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 4. 20.]

제2조(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의 순서) ① 해양경찰관은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2. 11., 2014. 11. 19., 2017. 7. 26., 2026. 4. 20.>

1. 경고: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선박등의 선장(선박등을 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행위를 중단할 것과 해양경찰관의 이동·해산·피난 명령 또는 이동·피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벌칙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경고할 것
2. 이동·해산·피난 명령: 제1호에 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멈추지 아니하거나,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명·신체에 대한 위하나 중대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또는 해양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선박등을 이동·해산하거나 선장, 해원(海員) 또는 승객에게 피난할 것을 세 번 이상 명령할 것
3. 이동·해산·피난 실행: 제2호에 따른 이동·해산·피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선박등을 이동·해산시키거나 선장, 해원(海員) 또는 승객을 피난시킬 것

② 해양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을 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개정 2014. 2. 11., 2014. 11. 19., 2017. 7. 26.>

[제목개정 2014. 2. 11.]

제2조의2(해양 대테러 계획 등의 내용)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해양 대테러 계획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양 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테러 정세 및 전망 분석
2. 해양 대테러 조직·인력·시설·장비의 확충·관리
3. 해양 대테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제도 개선
4. 해양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교환
5. 국내외 대테러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6. 그 밖에 해양 테러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

[본조신설 2021. 3. 30.]

제3조(경비수역 내 점용·사용허가 등의 통보) ①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보는 다음 각 호의 허가, 공사 또는 사업의 시행, 면허(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를 하기 5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20. 7. 30., 2020. 8. 28., 2023. 2. 3.>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2. 「항만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
3. 「어촌·어항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시행
4.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5.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같은 조 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 면허는 제외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허가등과 관련된 인적 현황에 관한 사항
2. 허가등의 기간에 관한 사항
3. 허가등의 장소에 관한 사항
4. 허가등에 따라 해양경비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
5. 그 밖에 허가등의 내용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부칙 <제510호, 2012. 8. 17.>

이 규칙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호, 2014. 2. 11.>

이 규칙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5호, 2014. 11. 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 까지 생략

3[&]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경찰관”을 각각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5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을 “국민안전처장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3^{*} 부터 4[!] 까지 생략

부칙 <제250호, 2017. 7. 26.>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각각 “해양경찰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5호 중 “ 국민안전처장관 ” 을 “ 해양경찰청장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 국민안전처장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 ” 을 “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 ” 으로 한다.

부칙 <제420호, 2020. 7. 30.> (항만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 항만공사 ” 를 “ 항만개발사업 ” 으로 한다.

⑫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432호, 2020. 8. 28.>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같은 조 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 면허는 제외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제477호, 2021. 3. 30.>

이 규칙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1호, 2023. 2. 3.>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1& 까지 생략

1*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 「수산업법」 제8조 ” 를 “ 「수산업법」 제7조 ” 로 한다.

제15조 생략

부칙 <제793호, 2026. 4.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상주권관련법규

1. 영해 및 접속수역법
2.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3.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4.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 2018. 6. 14.] [법률 제15429호, 2018. 3. 13., 일부개정]

외교부 (국제법규과) 02 - 2100 - 7531

제1조(영해의 범위)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基線)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水域)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의 경우에는 12해리 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4.]

제2조(기선) ①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의 기선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척해도(大縮尺海圖)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低潮線)으로 한다.

② 지리적 특수사정이 있는 수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기선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4.]

제3조(내수)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부터 육지 쪽에 있는 수역은 내수(內水)로 한다.

[전문개정 2011. 4. 4.]

제3조의2(접속수역의 범위) 대한민국의 접속수역은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24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의 경우에는 기선으로부터 24해리 이내에서 접속수역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4.]

제4조(인접국 또는 대항국과의 경계선) 대한민국과 인접하거나 마주 보고 있는 국가와의 영해 및 접속수역의 경계선은 관계국과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두 나라가 각자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하는 중간선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4. 4.]

제5조(외국선박의 통항) ①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통항(無害通航)할 수 있다.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당국에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외국선박이 통항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 및 제13호의 행위로

서 관계 당국의 허가·승인 또는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의 주권·영토보전 또는 독립에 대한 어떠한 힘의 위협이나 행사(行使), 그 밖에 국제연합헌장에 구현된 국제법원칙을 위반한 방법으로 하는 어떠한 힘의 위협이나 행사
 2. 무기를 사용하여 하는 훈련 또는 연습
 3. 항공기의 이함(離艦)·착함(着艦) 또는 탑재
 4. 군사기기의 발진(發進)·착함 또는 탑재
 5. 잠수항행
 6.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의 수집
 7.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에 유해한 선전·선동
 8. 대한민국의 관세·재정·출입국관리 또는 보건·위생에 관한 법규에 위반되는 물품이나 통화(通貨)의 양하(揚荷)·적하(積荷) 또는 사람의 승선·하선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의 배출
 10. 어로(漁撈)
 11. 조사 또는 측량
 12. 대한민국 통신체제의 방해 또는 설비 및 시설물의 훼손
 13. 통항과 직접 관련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③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을 정하여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4.]

제6조(정선 등) 외국선박(외국의 군함 및 비상업용 정부선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제5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당국은 정선(停船)·검색·나포(拿捕),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4.]

제6조의2(접속수역에서의 관계 당국의 권한) 대한민국의 접속수역에서 관계 당국은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영토 또는 영해에서 관세·재정·출입국관리 또는 보건·위생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의 방지
2. 대한민국의 영토 또는 영해에서 관세·재정·출입국관리 또는 보건·위생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규를 위반한 행위의 제재

[전문개정 2011. 4. 4.]

제7조(조약 등과의 관계) 대한민국의 영해 및 접속수역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 3. 2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7. 3. 21.>]

- 제8조(벌칙)** ①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외국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정상을 고려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선박, 기재(器材), 채포물(採捕物) 또는 그 밖의 위반물품을 몰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3.>
- ② 제6조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외국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 ④ 이 조를 적용할 때 그 행위가 이 법 외의 다른 법률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형으로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4. 4.]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7. 3. 21.>]

제9조(군함 등에 대한 특례) 외국의 군함이나 비상업용 정부선박 또는 그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가 이 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의 시정이나 영해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4.]

[제8조에서 이동 <2017. 3. 21.>]

부칙 <제3037호, 1977. 12. 31.>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4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86호, 1995. 12. 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24호, 2011. 4.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07호, 2017. 3.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29호, 2018. 3. 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외교부 (국제법규과) 02 - 2100 - 7531

제1조(목적) 이 영은 영해및접속수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7. 31>

제2조(직선기선의 기점) 영해의 폭을 측정함에 있어서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선을 기선으로 하는 각 수역과 그 기점은 별표1과 같다.

제3조(대한해협에 있어서의 영해의 범위)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대한해협을 구성하는 수역에 있어서의 영해는 법 제1조 단서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선을 연결하는 선의 육지측에 있는 수역으로 한다. <개정 2018. 6. 5.>

제4조(외국군함등의 통항)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그 통항 3일 전까지(공휴일은 제외한다) 외교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고해야 한다. 다만, 해당 군함 또는 선박이 통과하는 수역이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으로서 해당 수역에 공해대(公海帶)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2. 12. 18., 2013. 3. 23., 2021. 1. 5.>

1. 당해 선박의 선명、종류 및 번호
2. 통항목적
3. 통항항로 및 일정

제5조(외국선박의 영해내 활동) ①외국선박이 영해내에서 법 제5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제11호 또는 제13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계당국의 허가、승인 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2. 12. 18., 2013. 3. 23.>

1. 당해 선박의 선명、종류 및 번호
2. 활동목적
3. 활동수역、항로 및 일정

②법 제5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 또는 제11호의 행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당국의 허가、승인 또는 동의를 얻은 때에는 이 영에 의한 허가、승인 또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제6조(오염물질의 배출규제 기준) 법 제5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 1. 11.>

[전문개정 2002. 12. 18.]

제7조(무해통항의 일시정지)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해내의 일정수역에 있어서 외국 선박의 무해통항의 일시적 정지는 국방부장관이 행하되,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무해통항의 일시적 정지 수역, 정지기간 및 정지사유를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9162호, 1978. 9. 20.>

①(시행일) 이 영은 1978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정비) 대통령령 제8,994호 영해법의시행일등에관한규정중 제2조 및 별표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3463호, 1991. 9. 7.>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영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 해양오염방지법 제5조와 제10조제1항 및 제2항 ” 을 “ 해양오염방지법 제5조, 제11조,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제2항 ” 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15133호, 1996. 7. 31.> (영해법중개정법률의시행일등에관한규정)

제1조 중 “ 영해법 ” 을 “ 영해및접속수역법 ” 으로 한다.

부칙 <제17803호, 2002. 12. 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영해법의시행일등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20544호, 2008. 1. 1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 을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 으로 한다.

⑫ 부터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4424호,2013. 3. 23.>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외교통상부장관 ” 을 각각 “ 외교부장관 ” 으로 한다.

⑦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28946호,2018. 6. 5.>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80호,2021. 1. 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02.12.18>

직선을 기선으로 하는 수역과 그 기점(제2조관련)

(좌표체계 : 세계측지계)

| 수역 | 기점 | 지명 | 경 위 도 |
|-------|-----|----------------------|-----------------------------------|
| 영 일 만 | 1. | 달 만 갑 | 북위 36도 06분 20초
동경 129도 26분 00초 |
| | 2. | 호 미 꽃 | 북위 36도 05분 29초
동경 129도 33분 28초 |
| 울 산 만 | 3. | 화 암 추 | 북위 35도 28분 17초
동경 129도 24분 40초 |
| | 4. | 범 월 갑 | 북위 35도 25분 56초
동경 129도 22분 08초 |
| 남 해 안 | 5. | 1.5미터암 | 북위 35도 10분 09초
동경 129도 13분 03초 |
| | 6. | 생 도 | 북위 35도 02분 13초
동경 129도 05분 35초 |
| | 7. | 홍 도 | 북위 34도 32분 05초
동경 128도 43분 59초 |
| | 8. | 간 여 암 | 북위 34도 17분 16초
동경 127도 51분 18초 |
| | 9. | 하 백 도 | 북위 34도 01분 42초
동경 127도 36분 33초 |
| | 10. | 거 문 도 | 북위 34도 00분 17초
동경 127도 19분 28초 |
| | 11. | 여 서 도 | 북위 33도 58분 06초
동경 126도 55분 26초 |
| | 12. | 장 수 도 | 북위 33도 55분 04초
동경 126도 38분 16초 |
| | 13. | 절 명 서 | 북위 33도 52분 01초
동경 126도 18분 44초 |
| 서 해 안 | 14. | 소 흑 산 도 | 북위 34도 02분 49초
동경 125도 07분 22초 |
| | 15. | 소 국 흘 도
(소흑산도북서방) | 북위 34도 07분 07초
동경 125도 04분 35초 |
| | 16. | 홍 도 | 북위 34도 40분 29초
동경 125도 10분 22초 |

| | | |
|-----|----------------|-----------------------------------|
| 17. | 고 서
(홍도북서방) | 북위 34도 43분 15초
동경 125도 11분 17초 |
| 18. | 횡 도 | 북위 35도 20분 12초
동경 125도 59분 05초 |
| 19. | 상 왕 등 도 | 북위 35도 39분 36초
동경 126도 06분 01초 |
| 20. | 직 도 | 북위 35도 53분 22초
동경 126도 04분 01초 |
| 21. | 어 청 도 | 북위 36도 07분 16초
동경 125도 58분 03초 |
| 22. | 서 격 렬 비 도 | 북위 36도 36분 47초
동경 125도 32분 29초 |
| 23. | 소 령 도 | 북위 36도 58분 56초
동경 125도 44분 58초 |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8. 6. 5.>

대한해협에 있어서의 영해의 외측한계

| | |
|----|---|
| 1. | 별표 1에 따른 기점중 기점 5(1.5미터암)와 기점 6(생도) 및 기점 7(홍도)을 차례로 연결하는 직선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외측 3해리의 선 |
| 2. | 별표 1에 따른 기점중 기점 5(1.5미터암)에서 127도로 그은 선과 제1호에 따른 선의 교점으로부터 93도로 그은 선이 12해리선과 교차하는 점까지의 선 |
| 3. | 별표 1에 따른 기점중 기점 7(홍도)에서 120도로 그은 선과 제1호에 따른 선의 교점으로부터 172도로 그은 선이 12해리선과 교차하는 점까지의 선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637호, 2026. 5. 12.,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051 - 773 - 5566, 5565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관계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의 어업활동에 관한 우리나라의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의 적정한 보존·관리 및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1.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정된 수역(水域)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나.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이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
3. “어업”이란 수산동식물(水産動植物)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어업활동”이란 어업이나 어업에 관련된 탐색·집어(集魚), 어획물의 보관·저장·가공,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 선박에 필요한 물건의 보급 또는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관련된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9. 8. 27.>

- ②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외국과의 협정에서 따로 정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의 어업활동에 관하여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3. 21.>

[전문개정 2010. 3. 17.]

제4조(특정금지구역에서의 어업활동 금지) 외국인은 배타적 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漁業調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하 “특정금지구역”이라 한다

)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5조(어업의 허가 등) ①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를 받은 선박에 허가 사항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標識)를 하여야 하며, 제2항의 허가증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허가 절차, 허가증 발급, 표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3. 17.]

제6조(허가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허가 신청된 어업활동이 국제협약 또는 국가 간의 합의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의 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2. 허가 신청된 어업활동으로 인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어획량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3. 허용 가능한 어업 및 선박 규모의 기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될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어획량의 한도를 정할 때에는 수산자원의 동향, 대한민국 어업자의 어획 실태, 외국인의 어업 상황 및 주변 외국 수역에서의 대한민국 어업자의 어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설정된 총허용어획량(總許容漁獲量)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6조의2(불법 어업활동 혐의 선박에 대한 정선명령) 검사(檢事)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 어업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선박에 정선명령(停船命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선박은 명령에 따라야 한다.

1.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한민국과 어업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선박이 그 협정, 그 협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3. 17.]

제7조(입어료)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대한민국 정부에 입어료(入漁料)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어료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감액(減額)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어료의 금액, 납부 기한·방법, 감액·면제 기준 및 그 밖에 입어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8조(시험·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등의 승인) 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시험·연구, 교육실습 또는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려는 외국인은 선박마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2. 어업에 관련된 탐색·집어
3. 어획물의 보관·저장·가공
4.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 승인증의 발급 및 비치(備置), 승인 사항의 표지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는 “승인”으로, “허가증”은 “승인증”으로, “허가 사항”은 “승인 사항”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인 절차, 승인증 발급, 승인 사항, 표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3. 17.]

제9조(수수료) ① 외국인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감액·면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3. 17.]

제10조(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제한이나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그 제한 또는 조건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3. 17.]

제11조(어획물 등을 옮겨 싣는 행위 등 금지) 외국인이나 외국어선의 선장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사고의 발생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3. 17.]

제12조(어획물 등의 직접 양륙 금지) 외국인이나 외국어선의 선장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대한민국의 항구에 직접 양륙(揚陸)할 수 없다. 다만, 해양사고의 발생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3. 17.]

제13조(허가 및 승인의 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외국인이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활동 또는 시험·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등(이하 “어업활동등”이라 한다)의 정지를 명하거나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3. 17.]

제14조(대륙붕의 정착성 어종에 관계되는 어업활동등의 준용) ① 대한민국의 대륙붕 중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外側) 수역에서의 정착성 어종(「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7조제4항의 정착성 어종에 속하는 생물을 말한다)에 관련되는 어업활동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정착성 어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3. 17.]

제15조(하천회귀성 어종의 보호 및 관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내수면에서 알을 낳는 하천회귀성 어족자원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의 외측 수역에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6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어족자원에 대한 우선적인 이익과 책임을 가진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6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3.>

[전문개정 2010. 3. 17.]

제16조의2(벌칙) 제4조 또는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업활동을 한 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 5. 12.>

[본조신설 2016. 12. 27.]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5. 14., 2026. 5. 12.>

1. 삭제 <2016. 12. 27.>

2. 제10조에 따라 제5조제1항의 허가에 붙이는 제한 또는 조건(제10조에 따라 변경된 제한 또는 조건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3. 제11조를 위반하여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은 자
4. 제13조에 따른 어업활동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조, 제5조제1항, 제10조 또는 제13조를 위반하여 어업 활동을 한 자

[전문개정 2010. 3. 17.]

제17조의2(벌칙)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정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5. 14., 2026. 5. 12.>

[전문개정 2010. 3. 17.]

제18조(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항구에 직접 양륙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제1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등의 행위를 한 자
2. 제10조에 따라 제8조제1항의 승인에 붙이는 제한 또는 조건(제10조에 따라 변경된 제한 또는 조건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제1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한 또는 조건이나 변경된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한 자를 포함한다)
3. 제13조(제1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시험·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등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0. 3. 17.]

제20조(벌칙) 제5조제3항에 따른 허가 사항의 표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증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제8조제2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1조(몰수 또는 추정) ① 제16조의2, 제17조, 제18조 또는 제19조의 죄를 범한 자가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어획물 및 그 제품, 선박, 어구(漁具) 또는 그 밖의 어업활동등에 사용한 물건(이하 이 조에서 “어획물등”이라 한다)은 몰수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자국(自國)으로부터 어업활동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획물등을 몰수한다.

<개정 2016. 12. 27.>

② 제1항에 따라 어획물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정한다.<신설 2016. 12. 27.>

[전문개정 2010. 3. 17.]

제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또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7., 2020. 12. 8.>

[전문개정 2010. 3. 17.]

제23조(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 ①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선박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에 대하여 정선, 승선, 검색, 나포(拿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하되, 사정이 급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제1항의 조치를 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에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하는 어업활동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5. 14.>

1. 담보금이나 담보금 제공을 보증하는 서류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에게 제출되었을 때에는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를 석방하고, 선박을 반환한다는 취지

2. 담보금의 금액

④ 검사는 제3항에 따라 고지된 담보금 또는 그 제공을 보증하는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를 석방하고 선박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4.>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담보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벌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가 위반 사항의 내용과 위반횟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2. 5. 14., 2026. 5. 12.>

[전문개정 2010. 3. 17.]

제24조(담보금의 보관·국고귀속 및 반환 등) ① 담보금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가 보관한다.

② 담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개월이 지난 날에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국고 귀속일 전날까지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가 지정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3개월이 지나기 전의 특정일에 출석하거나 압수물을 제출한다는 취지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가 검사 또는 법원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도 그 지정일 및 지정 장소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가 검사 또는 법원으로부터 반환된 압수물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그 지정일 및 지정 장소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지 아니한 담보금은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가 그가 신청한 특정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압수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국고에 귀속된다.

④ 검사는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국고귀속 사유로 해당 담보금이 국고에 귀속되기 전에 법원에서 선고한 벌금액이 납부된 경우 등 담보금 보관이 필요하지 아니한 사유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5조(위반 선박에 대한 사법절차 등의 세부 시행 사항) 제23조에 따른 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와 제24조에 따른 담보금의 보관, 국고귀속 및 반환 등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6조 삭제 <2010. 3. 17.>

부칙 <제5152호, 1996. 8. 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997. 8. 6. 대통령령 제15449호에 의하여 1997. 8. 7.부터 시행]

②(제5조 내지 제15조의 적용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및 수역에 관하여는 기한을 정하여 제5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5153호, 1996. 8. 8.>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1996. 8. 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 생략

제3조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8>생략

<69>법률 제5152호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본문·제2호, 제8조제1항 본문, 제10조, 제13조,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중 “수산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제2호·제3호, 제8조제1항 본문, 동조제3항, 제9조제1항·제3항, 제11조 단서 및 제12조 단서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5809호,1999. 2. 5.>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단서 및 제12조 단서중 “해난사고”를 각각 “해양사고”로 한다.

⑦내지1& 생략

부칙 <제8220호,2007. 1. 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77호,2007. 4. 11.> (수산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54조의2”를 “「수산업법」 제56조”로 한다.

⑫내지2\$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8852호,2008. 2. 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 、 <생략> 、 、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 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42> 까지 생략

<643>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1조 단서, 제12조 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3조, 제14조제2항 및 제16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64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627호, 2009. 4. 22.> (수산자원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에 따라”로 한다.

⑤ 부터 ⑦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0119호, 2010. 3. 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20호, 2012. 5.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및 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6>까지 생략

<297>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제2호·제3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제3항, 제11조 단서 및 제12조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3조, 제14조제2항 및 제16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9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507호, 2016. 12.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05호, 2017. 3. 21.>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배타적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배타적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6568호, 2019. 8. 27.> (양식산업발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까지 생략

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 「수산업법」 ”을 “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으로 한다.

2! 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7616호,2020. 12. 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37호,2026. 5. 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5. 20.] [대통령령 제35530호, 2025. 5. 20.,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051 - 773 - 5566, 5565

제1조(목적) 이 영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 6.]

제2조(특정금지구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특정금지구역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2. 1. 6.]

제3조(어업 등의 허가사항) ① 법 제5조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21. 1. 5.>

1. 어업의 종류
2. 어선의 규모
3. 부속선의 선박 수
4. 포획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 및 예상어획량

②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 어업의 종류에 따른 어선의 규모, 부속선의 선박 수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21. 1. 5.>

[전문개정 2012. 1. 6.]

제3조의2(사법경찰관) 법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경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5. 20.>

1.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8호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 중 7급 이상의 공무원

[전문개정 2012. 1. 6.]

제4조(입어료) ① 법 제7조에 따른 입어료(入漁料)는 기본입어료와 예상어획량에 따른 입어료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입어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톤수 30톤 이하의 어선(부속선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만원
2. 총톤수 30톤을 초과하는 어선: 3만원에 총톤수 30톤을 초과하는 1톤당 1천원씩을 더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예상어획량에 따른 입어료는 예상어획량 1톤 단위로 산정하되,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3. 1. 10.>

④ 외국인(외국정부가 해당 국가의 국민을 대행하여 일괄적으로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외국정부를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입어료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간 내에 대한민국 통화(通貨)로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입어료의 징수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 6.]

제5조(입어료의 감액·면제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입어료의 감액·면제, 납부방법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어료를 감액·면제하거나 그 납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 6.]

제6조(허가·승인의 취소 요구 등) ① 검사나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외국인이 법,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어업활동 또는 시험·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등의 금지 명령 등(이하 이 조에서 “행정처분”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검사나 제1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진술조서 사본, 위반사실확인서 사본 등 위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 6.]

제7조 삭제 <2007. 3. 27.>

제8조(위반선박 등의 나포·억류 통보) ① 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선박(이하 이 조에서 “위반선박”이라 한다)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를 나포(拿捕)하거나 억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선박의 선적국(船籍國)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위반선박의 명칭 및 총톤수
2. 위반선박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3. 선장의 성명 및 주소
4. 승무원의 수

5. 위반선박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

② 검사는 위반선박의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가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그 판결에 관한 사항을 해당 위반선박의 선적국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 6.]

제9조(담보금의 금액에 관한 기준)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담보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행위에 대하여 규정된 벌금액, 위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 6.]

제10조(담보금의 국고귀속) ① 검사는 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어야 할 담보금이 있을 때에는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지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담보금의 납입 연월일
2. 담보금의 금액
3. 담보금의 납부 사유
4. 국고귀속 사유 및 그 발생 연월일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담보금의 국고귀속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검사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 6.]

부칙 <제15449호, 1997. 8.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1997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5152호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은 1997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법 제5조 내지 법 제15조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조 내지 법 제15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경제수역에서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국민
2.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중화인민공화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이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양생물자원의 적정한 보존·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경제수역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수역에서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법 제5조 내지 법 제15조의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19976호,2007. 3. 27.>

이 영은 200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51호,2007. 10. 31.> (수산업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 「수산업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을 “ 「수산업법」 제86조에 따른 ”으로 한다.

⑨ 부터 2&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0677호,2008. 2. 29.>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 까지 생략

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항·제4항,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 및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5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 <제22127호,2010. 4. 20.> (수산업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관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 「수산업법」 제86조 ”를 “ 「수산업법」 제88조 ”로 한다.

⑩ 부터2#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2493호,2010. 11. 15.> (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4& 까지 생략

4*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을 “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으로 한다.

4(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3491호,2012. 1.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55호,2013. 3. 2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3\$ 까지 생략

3%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항·제4항,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 및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을 각각 “ 해양수산부장관 ”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5항 중 “ 농림수산식품부령 ”을 각각 “ 해양수산부령 ”으로 한다.

별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 농림수산식품부령 ”을 “ 해양수산부령 ”으로 한다.

3^ 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제31380호,2021. 1. 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3225호,2023. 1. 10.> (수산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 「수산업법」 제88조 ”를 “ 「수산업법」 제95조 ”로 한다.

1& 부터4*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35530호,2025. 5.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13.3.23>

특정금지구역(제2조 관련)

1. 대한민국 동해 중 다음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안의 배타적 경제수역
 - 가. 북위 38도 37분 01.13초(동경측지계: 북위 38도 36분 51초)와 육안(섬이 아닌 육지의 해안선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과의 교차점
 - 나. 북위 38도 37분 00.78초(동경측지계: 북위 38도 36분 51초)와 동경 131도 59분 50.76초(동경측지계: 동경 132도 00분)의 교차점
 - 다. 북위 38도 15분 09.93초(동경측지계: 북위 38도 15분)와 동경 131도 59분 50.78초(동경측지계: 동경 132도 00분)의 교차점
 - 라. 북위 38도 15분 07.33초(동경측지계: 북위 38도 15분)와 육안과의 교차점
2. 대한민국 서해 중 다음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안의 배타적 경제수역
 - 가. 북위 38도 03분 10.44초(동경측지계: 북위 38도 03분)와 육안과의 교차점
 - 나. 북위 38도 03분 09.80초(동경측지계: 북위 38도 03분)와 동경 123도 59분 53.40초(동경측지계: 동경 124도 00분)의 교차점
 - 다. 북위 37도 30분 10.04초(동경측지계: 북위 37도 30분)와 동경 123도 59분 53.41초(동경측지계: 동경 124도 00분)의 교차점
 - 라. 북위 37도 30분 10.04초(동경측지계: 북위 37도 30분)와 동경 124도 29분 53.25초(동경측지계: 동경 124도 30분)의 교차점
 - 마. 북위 37도 10분 10.18초(동경측지계: 북위 37도 10분)와 동경 124도 29분 53.26초(동경측지계: 동경 124도 30분)의 교차점
 - 바. 북위 37도 10분 22.83초(동경측지계: 북위 37도 10분)와 육안과의 교차점
3.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대한해협을 구성하는 수역의 경우에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기선(基線)으로부터 어떠한 점을 취할 때에도 해당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12해리인 선까지의 수역 중 배타적 경제수역
4. 어업자원의 주된 산란장소 또는 서식장소로서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漁業調整)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
 - 가. 북위 38도 36분 51초와 육안과의 교차점
 - 나. 북위 38도 36분 51초와 동경 132도 00분의 교차점

다. 북위 38도 15분과 동경 132도 00분의 교차점

라. 북위 38도 15분과 육안과의 교차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7. 13.] [해양수산부령 제807호, 2026. 7. 13.,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051 - 773 - 5566, 556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 19.]

제2조(허가신청절차) 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외국정부가 해당 국가의 국민을 대행하여 일괄적으로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외국정부를 말한다)은 어업활동을 시작하려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선박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1. 어업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2. 어업 외의 어업활동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는 외국정부에서 발급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어업활동 허가를 신청한 선박이 자국의 법령에 따른 어업활동 허가(면허·승인·신고 등을 포함한다)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해당 어업방법에 대한 해설서(어업방법이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방법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외국정부가 해당 국가의 국민을 대행하여 일괄적으로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어업활동 등의 허가신청서 집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어업활동 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업활동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제2항 각 호의 서류 외의 서류나 그 밖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4.>

[전문개정 2012. 1. 19.]

제3조(공동신청) 2명 이상의 외국인이 법 제5조에 따른 어업활동 허가를 공동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정하여 제2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적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 19.]

제4조(어업활동 허가를 위한 신청사항의 확인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어업활동 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업활동 허가신청사

항을 확인하게 하거나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전문개정 2012. 1. 19.]

제5조(허가증의 발급절차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외국정부가 해당 국가의 국민을 대행하여 일괄적으로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외국정부를 말한다)에게 제3항에 따른 허가증과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허가증등”이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1. 별지 제4호서식(외국 정부에 허가증을 발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어업활동 허가현황 및 입어료 부과명세서
2. 입어료 납입고지서(「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납입고지서로 하되, 그 내용 중 한글로 표기된 부분에는 영문을 함께 적는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정부에 허가증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증등을 주한 외국공관(대사관·공사관·총영사관 및 영사관을 말하며, 명예영사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장에게 송부하여 그 교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업활동 허가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속선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해당 부속선의 수에 맞추어 허가증 사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1. 어업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2. 어업 외의 어업활동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증등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입어료를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외국인이 소속된 국가의 외국정부로 하여금 입어료의 납부상황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입어료 납부명세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전문개정 2012. 1. 19.]

제6조(허가증의 비치)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그 허가증을 허가받은 선박의 조타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부속선이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 부속선의 조타실에 허가증 사본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 19.]

제7조(허가증의 재발급) ①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허가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허가증을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1.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2. 허가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그 허가증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증의 재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전문개정 2012. 1. 19.]

제8조(허가증의 반납) 법 제5조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허가증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업활동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선박이 침몰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12. 1. 19.]

제9조(어업활동 허가번호의 표지)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선박마다 별지 제1도의 어업활동 허가번호판(이하 “허가번호판”이라 한다)을 조타실 좌우 측면의 중앙부에 각각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 19.]

제10조(표지깃발의 게양)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마다 별지 제2도의 표지깃발을 선박의 마스트 상단부에 게양해야 한다. <개정 2021. 6. 30.>

1. 배타적 경제수역 안으로 들어오는(이하 “입역”이라 한다) 경우
2. 배타적 경제수역 밖으로 나가는(이하 “출역”이라 한다) 경우
3.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 1. 19.]

[제목개정 2021. 6. 30.]

제11조(어업활동 허가번호의 부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어업활동 허가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② 제1항에 따른 어업활동 허가번호의 부여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2. 1. 19.]

제12조(어업활동 허가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허가증 사본과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1. 선박의 명칭
2. 선박의 총톤수 또는 기관의 출력
3.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 또는 선장의 성명이나 주소

4.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경우의 외국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
5. 선장
6. 통신방법 또는 주파수
7. 화물의 적재가능용량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4.>

[전문개정 2012. 1. 19.]

제13조(어획량의 한도)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동식물의 종류, 해역 및 선박별로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획량의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전문개정 2012. 1. 19.]

제14조(허가어업의 종류 및 규모등) 법 제6조제1항제3호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허가어업의 종류, 허가선박의 규모 및 부속선의 허용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2. 1. 19.]

제15조(입어료의 징수절차)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입어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입어료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 19.]

제16조(시험·연구 등의 승인신청) ① 외국인(외국정부가 해당 국가의 국민을 대행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시험·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등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외국정부를 말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등의 승인(이하 “시험·연구 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선박마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시험·연구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1. 시험·연구 승인을 신청한 선박이 자국의 법령에 따른 어업활동 등의 허가(면허·승인·신고 등을 포함한다)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
 3. 시험·연구 등의 계획서(시험·연구 등의 시기, 주된 시험·연구구역, 어획계획량과 승선원 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4.>
1.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량
 2. 기존 어업자의 어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3. 수산자원의 보호 및 어업조정(漁業調整)에 미치는 영향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연구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험·연구 승인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승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4.>

[전문개정 2012. 1. 19.]

제17조(수수료) ① 법 제9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톤수 100톤 미만인 선박: 3만원
2. 총톤수 100톤 이상 1천톤 미만인 선박: 5만원
3. 총톤수 1천톤 이상인 선박: 10만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수료의 감액 또는 면제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외국정부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라 수수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4.>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그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4.>

[전문개정 2012. 1. 19.]

제18조(어업활동 허가 및 시험·연구 승인 시의 제한 또는 조건) 법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활동 허가 또는 시험·연구 승인을 하는 경우에 붙이는 제한이나 조건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 3. 24.>

[전문개정 2012. 1. 19.]

제19조(어획물 등을 옮겨 실는 행위 등의 특례) 법 제11조 단서에 따라 외국인이나 외국어선의 선장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실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2.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부속선에 옮겨 실는 경우
3.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어획물 운반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선박에 옮겨 실는 경우

[전문개정 2012. 1. 19.]

제20조(어획물의 직접 양륙 금지의 특례)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외국인이나 외국어선의 선장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대한민국의 항구에 직접 양륙(揚陸)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선박 또는 인명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전문개정 2012. 1. 19.]

제21조(법령위반행위의 보고 등) ① 영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은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 외국어선의 선장 또는 그 종사자(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가 법,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위반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

2. 위반사실 확인서 또는 그 밖에 위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6호서식의 행정처분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법 제13조에 따른 어업활동 등의 정지나 어업활동 허가의 취소(이하 “행정처분”이라 한다)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4.>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위반조서 사본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 사본

[전문개정 2012. 1. 19.]

제22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3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거나 시험·연구 승인을 받은 외국인등이 법,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2. 1. 19.]

제23조(행정처분의 절차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행정처분 통지서를 교부함으로써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다. <개정 2013. 3. 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행정처분을 받은 외국인등에게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서를 교부하려는 경우에 해당 외국인등에게 직접 교부하기 곤란하면 외국정부나 외국공관에 그 교부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3. 3. 24.>

[전문개정 2012. 1. 19.]

제24조(정지처분을 받은 선박에 대한 조치) 영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은 법 제13조에 따라 어업활동 등의 정지처분을 받은 선박에 대하여 정지기간 동안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있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 19.]

제25조(행정처분 상황의 통보)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처분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4. 11. 19., 2017. 7. 28.>

1. 부산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도지사(충청북도지사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도지사

2. 해양경찰청장

3. 영 제6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요구한 검사

[전문개정 2012. 1. 19.]

제26조(행정처분 상황의 기록)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 내용을 제5조제3항에 따른 어업활동 허가대장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선박 행정처분 상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전문개정 2012. 1. 19.]

제27조(정선명령) ① 검사나 영 제3조의2에 따른 사법경찰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외국선박을 정선(停船)시키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신호기 엘(L)의 계양
2.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사이렌·뱃고동 또는 그 밖의 음향신호에 의한 엘(L)의 신호(단음 1회, 장음 1회, 단음 2회를 7초의 간격으로 계속한다)
3.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투광기에 의한 엘(L)의 신호[단광(短光) 1회, 장광(長光) 1회, 단광 2회를 7초의 간격으로 계속한다]
4. 마이크로폰 또는 육성(肉聲)

② 제1항에서 “장음” 또는 “장광”이란 3초간 계속 소리를 울리거나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하며, “단음” 또는 “단광”이란 1초간 계속 소리를 울리거나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1. 19.]

제28조(어업감독 공무원의 승선조사 결과보고) ① 영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은 법 제23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선박에 승선하여 어획물·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에 대한 조사(이하 “승선조사”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승선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라 그 결과를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보고를 받은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선조사 결과를 보고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외국선박 승선조사 상황기록부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전문개정 2012. 1. 19.]

제29조(서류의 표기문자) 법,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작성되는 문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나 문서를 제출받는 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글 또는 영문 외의 문자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전문개정 2012. 1. 19.]

제30조(준용규정) 시험·연구 승인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 및 제4항,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업활동 허가”는 “시험·연구 승인”으로, “허가증”은 “승인증”으로, “허가”는 “승인”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 1. 19.]

제31조 삭제 <2026. 7. 13.>

부칙 <제43호, 1998. 1.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호, 1999. 8. 24.>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 및 제20조제1호중 “해난사고”를 각각 “해양사고”로 한다.

⑤내지 ⑮생략

부칙 <제277호, 2004. 8. 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항질서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9호, 2007. 5.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 2008. 3. 3.>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2) 까지 생략

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제4항,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13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제17조제2항, 제3항 단서, 제18조,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제2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28조제1항, 제2항, 제29조 단서,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2쪽, 별지 제7호서식 2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2쪽,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2쪽, 별지 제7호서식 2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2쪽 및 별지 제21호서식 중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를 각각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로 한다.

2@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125호, 2010. 5. 31.>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가목 중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 내지 제6조의2, 제9조 내지 제11조, 제11조의 3, 제17조(조업구역에 한한다)”를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8조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조업구역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248호, 2012. 1.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 2013. 3. 24.>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8조,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9조 단서, 별표 2 비고 제2호·제5호, 별표 3 제1호가목, 같은 호 다목1), 같은 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표 제4호나목, 별표 4 제1호라목,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서명란,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서명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서명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2쪽, 별지 제7호서식

2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2쪽,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2쪽, 별지 제7호서식 2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2쪽 및 별지 제21호서식 중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를 각각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⑫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10호, 2014. 11. 19.>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127호, 2014. 12. 31.> (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호, 2017. 1. 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51호, 2017. 7. 28.>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6호,2021. 6. 3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
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1호,2023. 2. 3.>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가목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18조、제40조”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
15조、제31조”로 한다.

⑤부터1*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592호,2023. 3. 1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3호,2023. 3.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7호,2026. 7. 13.>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
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2.1.19>

어업활동 허가번호 및 시험·연구 승인번호의 부여방법(제11조제2항 및 제30조 관련)

1. 어업활동 허가번호 및 시험·연구 승인번호는 국호(國號)의 약자(略字), 업종 또는 허가·승인의 구분, 허가·승인의 일련번호로 구성한다.
2. 업종 또는 허가·승인의 구분과 허가·승인의 일련번호는 가운뎃점으로 구분한다.
3. 국호의 약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일본국: J, 중화인민공화국: C, 러시아 연방: R, 기타 국가: E

4. 업종 또는 허가·승인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어업활동 허가

기선저인망어업: 21, 트롤어업: 22, 선망어업: 23, 채낚기어업: 24, 자망어업: 25, 안강망어업: 26, 봉수망어업: 27, 통발어업: 28, 연승어업: 29, 기타 어업: 30, 어업 외의 어업활동: 40

나. 시험·연구 승인: 70

5. 허가·승인의 일련번호는 허가·승인의 순서에 따른 업종별 일련번호로 한다.

<예시>

가. 어업활동 허가번호의 예: E21·0045(기타 국가 기선저인망어업의 어업활동 허가 제45호)

나. 시험·연구 승인번호의 예: E70·0001(기타 국가 시험·연구 승인 제1호)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3.3.24>

허가어업의 종류, 허가선박의 규모 및 부속선의 허용기준 등(제14조 관련)

| 허가어업의 종류 | 허가선박의 규모 | 부속선의 허용기준 | |
|----------|----------|-----------|-------|
| | 톤 수 | 종 류 | 척 수 |
| 기선저인망어업 | 140톤 미만 | — | — |
| 트롤어업 | 140톤 미만 | — | — |
| 선망어업 | 130톤 미만 | 등 선 | 2척 이내 |
| | | 운 반 선 | 4척 이내 |
| 채낚기어업 | 90톤 미만 | — | — |
| 자망어업 | 70톤 미만 | — | — |
| 안강망어업 | 90톤 미만 | — | — |
| 봉수망어업 | 70톤 미만 | — | — |
| 통발어업 | 70톤 미만 | — | — |
| 연승어업 | 70톤 미만 | — | — |

비고: 1. 톤수는 총톤수를 기준으로 한다.

2.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정부와 어업에 관한 협정·합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위 표에서 정한 허가선박의 규모나 부속선의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허가할 수 있다.
3. 외국인이 어업활동 허가를 신청한 어업이 위 표에서 정한 어업 외의 어업인 경우로서 위 표에서 정한 어업과 유사한 어업인 경우에는 위 표에서 정한 어업에 해당하는 허가선박의 규모와 부속선의 허용기준에 따른다.
4. 외국인이 어업활동 허가를 신청한 어업이 위 표에서 정한 허가어업 외의 어업인 경우로서 위 표에서 정한 어업과 유사하지 않은 어업일 때에는 어업자원의 보호, 어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어업의 방법, 어구 및 선박의 규모 등에 대한 해당 외국의 허가 등의 기준에 준하여 어업활동 허가를 할 수 있다.
5.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자원의 보호, 어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어업활동에 사용되는 어구의 규모 및 수량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허가할 수 있다.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3. 2. 3.>

어업활동 허가 또는 시험·연구 승인을 하는 경우에 붙이는 제한이나 조건(제18조 관련)

1. 일반 준수사항

가. 해양수산부장관·해양경찰청장 및 검사의 어업활동 또는 시험·연구 등에 관한 명령이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어업활동 허가의 유효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 검사나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이 승선하여 서류·어획물 등을 조사하는 데에 협조해야 하며,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다음의 약호 및 순서에 따라 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승선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여한 어업활동 허가 또는 시험·연구 승인번호를 “NO” 다음에 타전(打電)해야 한다.

타전 예) 기타 국가 기선저인망어업의 어업활동 허가번호 제45호의 경우: NO E21·0045

2) 승선조사하려는 연·월·일·시·분을 각각 두 단위씩 구분하여 “DATE” 다음에 타전해야 한다.

타전 예) 2007년 3월 22일 12시 30분의 경우:

DATE0703221230

3) 승선조사하려는 수역의 위치를 동경 및 북위로 구분하여 “WAIT” 다음에 타전해야 한다.

타전 예) 동경 132도 20분 북위 36도 30분인 경우:

WAIT E13220N3630

<타전 예 총괄>

NOE21·0045-DATE0703221230-WAITE13220N3630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기간과 해역을 정하여 별지 제21호서식의 정지명령서에 의하여 어업활동 또는 시험·연구 등의 정지를 명령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이 경우 정지명령서는 해당 외국정부에 통보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1) 군사훈련이나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保衛)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방부장관이 국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3) 선박의 항행·정박·계류 또는 수저전선(水底電線)의 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수산에 관한 국제협약이나 국가 간의 합의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

바. 선박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 1)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는 행위
- 2) 그 밖에 대한민국의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지해하는 행위

사.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영 별표 제3호에 따른 특정금지구역에서 시험·연구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아. 어업활동허가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입어료를 납부하기 전에는 어업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2. 해양생물자원의 보호

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어업활동 허가 또는 시험·연구 승인을 하는 경우에 붙이는 제한·조건에 관하여는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7조·제10조·제18조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15조·제31조(조업구역으로 한정한다)를 준용한다.

나. 총톤수 60톤 이상의 기선저인망어선과 총톤수 70톤 이상의 트롤어선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중 동경 128도를 기준으로 동쪽의 해역에서는 어업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3.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보고 또는 신고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신속한 어획실태 파악을 위해 보고대상 선박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매일 낮 12시를 기준으로 선박의 위치와 어획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이하 “정오위치보고”라 한다)해야 한다.

1) 보고는 무선통신 등의 방법으로 매일 17시까지 해야 한다.

2) 1)의 보고는 다음의 약호와 순서에 따라 해야 한다.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여한 선박의 어업활동 허가 또는 시험·연구 승인번호를 “NO” 다음에 통보(이하 “타전”이라 한다)해야 한다.

타전 예) 기타 국가 기선저인망어업의 어업활동 허가번호 제45호의 경우: NO E21·0045

나) 선박의 위치를 “LOCA” 다음에 동경과 북위로 구분하여 타전해야 한다.

타전 예) 동경 133도 10분 북위 35도 18분인 경우:

LOCA E13310 N3518

다) 어종별 총누계 어획톤수를 “FISH” 다음에 영문 어종명과 아라비아숫자(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한다)로 타전하되,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NONE”이라고 타전한다.

타전 예) 고등어 30.3톤, 명태 50.5톤, 기타 어류 70.7톤을 어획한 경우:
FISH MACKERELS 30.3 POLLACK 50.5 OTHER
FISHES 70.7

라) 다)의 영문 어종명은 다음과 같이 표기해야 한다.

(1) 어류 FISHES

| | |
|-----------------------|-------------------------|
| ○ 가자미류 FLOUNDERS | ○ 정어리 SARDINE |
| ○ 명 태 POLLACK | ○ 전 어 HICKORY SHAD |
| ○ 병 어 POMFRET | ○ 청 어 HERRING |
| ○ 참조기 REDLIP CROAKER | ○ 밴댕이 ROUND HERRING |
| ○ 기타 조기 OTHER CROAKER | ○ 고등어 MACKERELS |
| ○ 강달이 CONVENIAS | ○ 전갱이류 JACK MACKERELS |
| ○ 갈 치 HAIR TAIL | ○ 삼치류 SPANISH MACKERELS |
| ○ 붕장어 SEA EEL | ○ 꽁 치 SAURY |
| ○ 양미리 SAND LANCE | ○ 아 귀 MONKFISH |
| ○ 복어류 PUFFERS | ○ 기타 어류 OTHER FISHES |
| ○ 멸치류 ANCHOVIES | |

(2) 갑각류 CRUSTACEA

| | |
|---------------|--------------------------|
| ○ 새우류 SHRIMPS | ○ 기타 갑각류 OTHER CRUSTACEA |
| ○ 게 류 CRABS | |

(3) 연체동물 MOLLUSCA

| | |
|---------------|--------------------------|
| ○ 오징어 SQUID | ○ 낙 지 ROULPE SQUID |
| ○ 문 어 OCTOPUS | ○ 기타 연체동물 OTHER MOLLUSCA |

(4) 기타 수산동물 OTHER AQUATIC ANIMALS

<타전 예 총괄>

NOE21·0045-LOCA E13310N3518-FISHJ POLLACK50.5
SALMON30.3

나. 법 제11조 단서에 따라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실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가목2)의 약호와 순서에 따라 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가 발생하여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실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다.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대한민국의 항구에 직접 양륙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음의 약호와 순서에 따라 무선통신 등을 이

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의 항구에 직접 양륙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은 직접 양륙할 수 있는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한민국의 영해 바깥쪽으로 운송하여야 한다.

- 1)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여한 선박의 어업활동 허가 또는 시험·연구 승인번호를 “NO” 다음에 타전해야 한다.

타전 예) 기타 국가 기선저인망어업의 어업활동 허가번호 제45호의 경우: NO E21·0045

- 2) 선박의 현재 위치를 “LOCA” 다음에 동경과 북위로 구분하여 타전해야 한다.

타전 예) 동경 133도 10분 북위 35도 18분인 경우:

LOCA E13310 N3518

- 3) 양륙한 항구의 지명과 부두명을 “PORT” 다음에 영문자로 타전하되, 부두명은 항구의 지명 다음에 괄호로 표시한다.

타전 예) 여수 신부두의 경우: PORT YEOSU(NEWPORT)

부산 제5부두의 경우: PORT PUSAN(5PORT)

- 4) 양륙한 어종별 총톤수를 “FISH” 다음에 가목2)라)에 따른 영문 어종명과 아라비아숫자(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표시한다)로 타전한다.

타전 예) 고등어 30.3톤, 명태 50.5톤, 기타 어류 70.7톤을 양륙한 경

우:

FISH MACKERELS 30.3 POLLACK 50.5 OTHER

FISHES 70.7

<타전 예 총괄>

NOE22·0045-LOCA

E13310N3518-PORT

PUSAN(5PORT)-FISH POLLACK 50.5 SALMON 30.3

라. 입역하거나 출역하려는 경우에는 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입역신고 또는 출역신고를 해야 한다.

- 1) 입역하거나 출역하기 6시간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기상악화 등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입역 또는 출역하기 1시간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 2) 1)의 보고는 다음의 약호와 순서에 따라 해야 한다.

가) 입역하려는 경우에는 “INT” 로, 출역하려는 경우에는 “OUT” 로 타전한다.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여한 선박의 어업활동 허가 또는 시험·연구 승인번호를 “NO” 다음에 타전해야 한다.

타전 예) 기타 국가 기선저인망어업의 어업활동 허가번호 제45호의 경

우: NO E21·0045

다) 입역하거나 출역하려는 일시를 “DATE” 다음에 연·월·일·시·

분으로 구분하여 각각 두 단위씩 타전해야 한다.

타전 예) 2007년 3월 22일 10시 20분의 경우:

DATE 0703221020

라) 선박의 현재 위치를 “LOCA” 다음에 동경과 북위로 구분하여 타전해야 한다.

타전 예) 동경 133도 10분 북위 35도 18분인 경우:

LOCA E13310 N3518

마) 입역 또는 출역 시 통과하려는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쪽 경계선의 위치를 “PASS” 다음에 동경과 북위로 구분하여 타전해야 한다.

타전 예) 동경 132도 26분 북위 36도 20분인 경우:

PASS E13226N3620

바) 어종별 총누계 어획톤수를 ” FISH” 다음에 가목2)라)에 따른 영문 어종명과 아라비아숫자(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표시한다)로 타전한다.

타전 예) 고등어 30.3톤, 명태 50.5톤, 기타 어류 70.7톤을 양륙한 경우: FISH MACKERELS 30.3 POLLACK 50.5 OTHER FISHES 70.7

<타전 예 총괄>

○ 입역의 경우:

I N T - N O E 2 2 .
0045-DATE0703221020-LOCAE13310N3518-PASSE13226
N3620-FISHNONE

○ 출역의 경우:

O U T - N O E 2 2 .
0045-DATE0703221020-LOCAE13310N3518-PASSE13226
N3620-FISHPOLLACK50.5 SALMON30.3

마.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보고 또는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무선국의 통신기, 호출부호 및 주파수를 이용해야 한다.
- 2) 보고 또는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보고 또는 신고 방법에 따라 첫머리에 “AMEND” 라고 타전하고 다시 보고하거나 신고해야 한다.
- 3) 전화를 이용하여 보고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해야 한다.

4. 어획실적의 기록, 유지 및 보고

- 가. 어획일별로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한 어종별 어획실적을 기록하고 유지해야 한다.
- 나.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어획실적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어획실적 보고서에 따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3. 3. 21.>

어업활동 또는 시험·연구 등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가목의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 1) 어업활동 허가기간이나 시험·연구 승인기간의 종료로 동일인이 같은 선박으로 새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 2) 행정처분을 받은 선박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해당 선박이 임차되어 같은어업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 라. 동시에 둘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각각의 행정처분 기준이 정지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정지일수를 합산하여 처분한다.
-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행정처분에 관하여 외국과 합의한 경우에는 해당 합의에 따라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 바. 어업활동 허가 또는 시험·연구 승인의 정지처분을 받은 외국인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그 정지일수에 30일을 추가하여 행정처분을 하되, 또 다시 그 행정처분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어업활동 허가 또는 시험·연구 등의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가. 법 제4조를 위반하여 외국인이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한 경우 | 법 제13조 | 정지 60일 | 정지 90일 | 취 소 |
| 나.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활동 | 법 제13조 | 취 소 | - | - |

| | | | | |
|---|--------|--------|--------|--------|
| 동의 허가(이하 이 표에서 "허가"라 한다)를 받거나 시험·연구 등의 승인(이하 이 표에서 "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 | | | | |
| 다. 법 제5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사항 외의 어업활동 등을 한 경우 | 법 제13조 | 정지 60일 | 정지 90일 | 취 소 |
| 라. 법 제5조제3항 또는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번호판 또는 승인번호판을 갖추어 두지 않거나 거짓 사실을 적은 허가번호판 또는 승인번호판을 갖추어 둔 경우 | 법 제13조 | 정지 30일 | 정지 60일 | 정지 90일 |
| 마. 법 제5조제3항 또는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알아보기 곤란하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허가번호판 또는 승인번호판을 갖추어 둔 경우 | 법 제13조 | 경 고 | 정지 30일 | 정지 60일 |
| 바. 법 제5조 및 제8조, 이 규칙 제10조 및 제30조를 위반하여 입역·출역 또는 어업활동 중임을 표시하는 표지깃발을 게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양한 경우 | 법 제13조 | 정지 30일 | 정지 60일 | 정지 90일 |
| 사. 법 제5조 및 제8조, 이 규칙 제10조 및 제30조를 위반하여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알아보기 곤란하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표지깃발을 게양한 경우 | 법 제13조 | 경 고 | 정지 30일 | 정지 60일 |
| 아. 법 제5조 및 제8조, 이 규칙 제10조 및 제30조를 위반하여 허가사항 또는 승인사항이 변경된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 법 제13조 | 경 고 | 정지 30일 | 정지 60일 |

| | | | | |
|---|--------|--------|--------|--------|
| 어업활동 등을 계속한 경우 | | | | |
| 자.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종별 할당어획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경우 | 법 제13조 | 정지 30일 | 취 소 | |
| 차. 법 제6조, 영 제3조 및 이 규칙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어선 규모 또는 어구 규모를 초과하거나 허가된 어구 외의 어구를 싣거나 사용한 경우 | 법 제13조 | 정지 30일 | 정지 60일 | 취 소 |
| 카. 법 제7조, 영 제4조 및 이 규칙 제15조를 위반하여 어업 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입어료를 최종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3조 | 취 소 | | |
| 타. 법 제10조 및 이 규칙 별표 3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입국 시키는 행위에 선박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대한민국의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저해하는 행위에 선박을 이용한 경우 | 법 제13조 | 정지 90일 | 취 소 | |
| 파. 법 제10조 및 이 규칙 별표 3을 위반하여 수산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국가 간의 합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어업활동 등을 한 경우 | 법 제13조 | 정지 30일 | 정지 60일 | 취 소 |
| 하. 법 제10조 및 이 규칙 별표 3을 위반하여 어획일별로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한 어종별 어획실적을 기록·유지 또는 보고하지 않거나 기록·유지 또는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13조 | 정지 30일 | 정지 60일 | 취 소 |
| 거. 법 제10조 및 이 규칙 별표 3을 위반하여 포획·채취 금 | 법 제13조 | 정지 30일 | 정지 60일 | 정지 90일 |

| | | | | |
|---|--------|--------|--------|--------|
| 지 체장(體長), 포획·채취 금지구역과 기간, 어구 사용금지구역과 기간, 특정 어구의 사용금지, 그물코 및 어구 규모의 제한을 준수하지 않고 어업활동 등을 한 경우 | | | | |
| 너. 법 제10조 및 이 규칙 별표 3을 위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정선, 승선, 서류조사 등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3조 | 정지 60일 | 취 소 | — |
| 더. 법 제10조 및 이 규칙 별표 3에 따른 제한 또는 조건 중 이 행정처분의 기준에 열거되지 않은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3조 | 정지 20일 | 정지 40일 | 정지 60일 |
| 러.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실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은 경우 | 법 제13조 | 정지 30일 | 정지 60일 | 취 소 |
| 머.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대한민국의 항구에 직접 양륙한 경우 | 법 제13조 | 정지 30일 | 정지 60일 | 취 소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6. 30.>

(앞 쪽)

어업 허가 신청서
(Application for Fishing License)

1. 어선의 명칭 및 등록(허가)번호 _____
(Name of Vessel and Reg. [License] No.) _____

2. 어업의 종류 _____
(Type of Fishery) _____

3. 어선의 국적 및 선적항 _____
(Vessel's Nationality and Port of Registry) _____

4. 어선의 제원
(Vessel Specifications)
총톤수 _____ 톤 기관의 출력 _____ 마력 최대 속력 _____ 노트
(Total Tonnage)(GT) (Engine Power)(HP) (Maximum Speed)(Knots)

5. 신청인
(Applicant)
소속·성명 또는 기관명 _____
(Name and Affiliation) _____
주소 _____
(Address) _____

6. 선장
(Captain)
성명 _____
(Name) _____
주소 _____
(Address) _____

7. 승선원 수 _____ 명
(No. of Crew Members)

8. 무선 통신 방법
(Radio Communication)
긴급 호출 무선
호출부호 _____ 통신연락 주파수 _____ 무선전화 주파수 _____
(Call Sign) (Emergency Call Radio Communication (Radio Call Frequency) Frequency)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 쪽)

9. 화물의 적재가능용량

(Cargo Capacity)

종류 (Type) _____ 수량 (No.) _____ 선창용량 (Storage Capacity) _____

10. 허가신청의 내용

(Contents of the Application)

| 조업수역(위치)
(Area) | 조업대상물
(Target Species) | 사용어구 및 수량
(Gear type and No.) | 조업기간
(Period) | 어획예정수량(톤)
(Planned Amount of Catch[ton]) |
|--------------------|---------------------------|----------------------------------|------------------|---|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11. 부속선의 선박 수:

(No. of Auxiliary Vessels)

12. 부속선의 선명 및 제원

(Name of Auxiliary Vessel and Specifications)

| 구분
(Type) | 선명
(Name of Vessel) | 총톤수
(Total Tonnage) | 마력
(HP) |
|--------------|------------------------|------------------------|------------|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을 하고자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a license to fish in the EEZ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Article 5 of the Act on the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on Foreigner's Fishing, Etc. with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년 (Date: 월 일)

신청인 (서명)

(Applicant) _____ (Signature)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To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구비서류(Requirement)

1. 어업활동 허가증 신청한 선박이 자국의 법령에 따른 어업활동 허가(면허·승인·신고 등을 포함합니다)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One copy of document verifying the application vessel has license[authorization, approval, report, etc. included] in accordance with its domestic laws)

2. 해당 어업방법에 대한 해설서(어업방법이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방법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Explanation of fishing methods [in case of fishing methods are greatly different from those of the Korean Fisheries Act])

※ 비 고: 한글 _____ 영어

(Remark Korean _____ English)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6. 30.>

(앞 쪽)

어업활동(어업 제외) 허가신청서
(Application for a License for Conducting Fishing-Related Activities
(Exclusive of Fishing))

1. 신청인

(Applicant)

소속·성명 또는 기관명 _____

(Name and Affiliation)

주소 _____

(Address)

2. 선박

(Vessel)

명칭 _____ 등록(허가)번호 _____

(Name)..... (Reg. [License] No.)

총톤수 _____ 톤 선장의 성명 _____

(Total Tonnage) (Ton) (Captain's Name)

3. 선박의 국적 및 선적항

(Vessel's Nationality and Port of Registry)

4. 선박의 제원

(Vessel Specifications)

총톤수 _____ 톤 기관의 출력 _____ 마력 최대 속력 _____ 노트

(Total Tonnage)(GT) (Engine Power) (HP) (Maximum Speed) (Knots)

5. 승무원 수 _____ 명

(No. of Crew Members)

6. 어업활동(어업 제외)의 목적

(Purpose of Fishing-Related Activities(Exclusive of Fishing))

7. 무선통신 방법

(Radio Communication)

호출부호 _____ 긴급호출 무선 _____

(Call Sign) 통신연락 주파수 _____ 무선전화 주파수 _____

(Emergency Call Radio (Radio Call Frequency)

Communication Frequency)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 쪽)

8. 화물의 적재가능용량
(Cargo Capacity)

종 류 _____ 수 량 _____ 선창용량 _____
(Type)..... (No.) (Storage Capacity)

9. 허가신청의 내용

(Contents of the Application)

| 조업수역(위치)
(Area) | 조업대상물
(Target Species) | 사용어구 및 수량
(Gear type and No.) | 조업기간
(Period) | 어획예정수량(톤)
(Planned Amount of Catch[ton]) |
|--------------------|---------------------------|----------------------------------|------------------|---|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10. 부속선의 선박 수: _____
(No. of Auxiliary Vessels)11. 부속선의 선명 및 제원
(Name of Auxiliary vessel and Specifications)

| 구 분
(Type) | 선 명
(Name of Vessel) | 총 톤 수
(Total Tonnage) | 마 력
(HP) |
|---------------|-------------------------|--------------------------|-------------|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어업 제외)을 하고자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a license for fishing-related activities(excluding fishing) to be conducted in the EEZ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Article 5 of the Act on the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on Foreigner's Fishing, Etc. with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년 월 일
(Date:)

신청인 _____ (서명)
(Applicant).....(Signature)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To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구비서류(Requirement)

1. 어업활동 허가를 신청한 선박이 자국의 법령에 따른 어업활동 허가(면허·승인·신고 등을 포함합니다)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One copy of document verifying the application vessel has license [authorization, approval, report, etc. included] in accordance with its domestic laws)

2. 해당 어업방법에 대한 해설서(어업방법이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방법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Explanation of fishing methods [in case of fishing methods are greatly different from those of the Korean Fisheries Act])

※ 비 고: _____ 한 글 _____ 영 어
(Remark _____ Korean _____ English)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3.24>

(앞 쪽)

어업활동 등의 허가·승인 신청서 집계표

(Summary Sheet for the Application for License or Authorization for Fishing-Related Activities)

신청국가명: _____

(Country)

| 선박의
종 류
(Type
of
Vessel) | 신청
우선순위
(Priority) | 신 청 인
주소·성
명(Name
and
Address
of the
Applicant) | 선박의
명 칭
(Name
of
Vessel) | 어업활동
등의 수
역
(Area) | 어업활동
등의
기간
(Period) | 어획예정량
(톤)
(Planned
Amount of
Catch[ton]) | 비 고
(Remarks) |
|--------------------------------------|--------------------------|---|--------------------------------------|-----------------------------|------------------------------|--|------------------|
| | | | |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 쪽)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우리나라의 어업인이 어업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허가 또는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The Government of hereby requests for the issuance of a license or authorization for the nationals of to pursue fishing-related activities in the EEZ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Article 5 or Paragraph 1, Article 8 of the Act on the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on Foreigner's Fishing, Etc. with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100 101 102

(Date:)

국 _____ (서명)

(Country:)(Signature)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To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비 고 1.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Remarks) (This form should be completed in Korean or English.)

2. 신청 우선순위는 어업활동 허가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시 고려사항임을 고려해야 한다.

(“Priority” means the priority given by the Korean government regarding licensing for fishing-related activities.)

3. 선박의 종류별로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

(This form should be completed separately for each vessel type.)

4. 수역은 동경과 북위를 연결한 네 점을 표기한다.

(Area should be expressed by the combination of four coordinates[east longitude and north latitude] constituting the area.)

5. 신청인의 주소·성명란에는 개인의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를, 단체의 경우에는 그 기관명·법인명 등과 주소를 적습니다.

(The "Name and Address" of applicant means, for individuals, that of the natural person, and for institutions, that of the legal.)

6. 어업활동 허가신청과 시험·연구 등의 승인신청은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

(The application for a license for fishing-related activity and the authorization for experiment and research should be completed separately.)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3.24>

어업활동 허가현황 및 입어로 부과명세서

(Statement for License for Fishing-Related Activities and Fishing
Fee Request)「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귀국(貴國) 어업
인들에 대한 어업활동 허가현황 및 납부해야 할 입어로 명세를 알려드립니다.(The Republic of Korea has notified statement for license for
fishing-related activities and fishing fee reques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Article 5 of the Act on the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of
Foreigner's Fishing, Etc. with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년 월 일

(Date:)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

인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official seal)

_____국 _____귀하

(Country:)()

| 어업의
종 류
(Type of
Fishery) | 허가번호
(License
No.) | 신 청 인
주소·성명
(Name and
Address
of the
Applicant) | 선박의
명 칭
(Name
of
Vessel) | 어 획
할당량
(톤)
(Quota
[ton]) | 입 어 료
(Fishing Fee) | | 비 고
(Remarks) |
|------------------------------------|--------------------------|--|--------------------------------------|---------------------------------------|-----------------------------|----------------------------------|------------------|
| | | | | | 금액(원)
(Paymen
t[won]) | 납부기한
(Deadline of
Payment) | |
| | | | |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 쪽)

| 어업의
종 류
(Type of
Fishery) | 허가번호
(License
No.) | 신 청 인
주소·성명
(Name and
Address
of the
Applicant) | 선박의
명 칭
(Name
of
Vessel) | 어 획
할당량
(톤)
(Quota
[ton]) | 입 어 료
(Fishing Fee) | | 비 고
(Remarks) |
|------------------------------------|--------------------------|--|--------------------------------------|---------------------------------------|-----------------------------|----------------------------------|------------------|
| | | | | | 금액(원)
(Payment
[won]) | 납부기한
(Deadline of
Payment) | |
| | | | | | | |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1.19>

어업활동허가대장

| 연월일 | 허가
번호 | 신청
국가 | 신청인
주소·성명 | 어업의
종 류 | 선박의
명 칭 | 무선통신 방법 | | | 조업
수역 | 조업
기간 | 어 획
할당량
(톤) | 입어료 | 행정
처분
상황 | 비고 |
|-----|----------|----------|--------------|------------|------------|----------|-----------------------|-------------------|----------|----------|-------------------|-----|----------------|----|
| | | | | | | 호출
부호 | 긴급호출
무선통신연락
주파수 | 무 선
전 화
주파수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6. 30.>

(1 쪽)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허가증
(License for Fishing in the EEZs of the Republic of Korea)

1. 허가번호 _____
(License No.)
2. 어선의 명칭 및 등록(허가)번호 _____
(Name of Vessel and Reg. [License] No.)
3. 어업의 종류 _____
(Type of Fishery)
4. 어선의 국적 및 선적항 _____
(Vessel's Nationality and Port of Registry)
5. 어선의 제원
(Vessel Specifications)
총톤수 _____ 톤 기관의 출력 _____ 마력 최대속력 _____ 노트
(Total Tonnage)(GT)(Engine Power) (HP) (Maximum Speed) (Knots)
6. 허가받은 자
(License Bearer)
소속·성명 또는 기관명 _____
(Name and Affiliation)
주소 _____
(Address)
7. 선장의 성명 및 주소 _____
(Name and Address of the Captain)
8. 승무원 수 _____ 명
(No. of Crew Members)
9. 무선통신 방법
(Radio Communication)
호출부호 _____ 긴급호출 무선 _____
(Call Sign) (Emergency Call Radio _____ 무선전화주파수 _____
Communication Frequency) (Radio Call Frequency)

380mm×268mm

(보존용지(1종) 120g/m²)

(2쪽)

·물의 적재가능용량
(Cargo Capacity)

· 수 량 선 창 용 량
(No.) (Storage Capacity)

·가신청의 내용
(Contents of License)

| 수역(위치)
(Area) | 조업대상물
(Target Species) | 허가어구 및 수량
(Gear type and No.) | 조업기간
(Period) | 어획할당량(톤)
(Quota [ton]) |
|------------------|---------------------------|----------------------------------|------------------|---------------------------|
| | | | | |
| | | | | |
| | | | | |
| | | | | |

·속선의 선박 수: _____

(No. of Auxiliary Vessels)

·속선의 선명 및 제원

(Name of the Auxiliary Vessels and Specifications)

| 구 분(Type) | 선 명
(Name of Vessel) | 톤 수
(Tonnage) | 마 력
(HP) |
|-----------|-------------------------|------------------|-------------|
| | | | |
| | | | |

·한 또는 조건: 별첨

(Restrictions or Conditions): (Attached)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을 허가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person and vessel have been licensed to conduct fishing-related activities in the EEZ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Article 5 of the Act on the Exercise of Sovereign Right on Foreigner's Fishing, Etc. with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년 월 일
(Date:)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

인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Official seal)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6. 30.>

(1 쪽)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활동(어업 제외) 허가증
(License for Fishing-Related Activities (Exclusive of Fishing) in the EEZs of the Republic of Korea)

1. 허가번호 _____
(License No.)
2. 어선의 명칭 및 등록(허가)번호 _____
(Name of Vessel and the Reg.(License) No.)
3. 어업활동(어업 제외)의 목적 _____
(Purpose of Fishing-Related Activities (Exclusive of Fishing))
4. 어선의 국적 및 선적항 _____
(Vessel's Nationality and Port of Registry)
5. 어선의 제원
(Vessel Specifications)
총톤수 _____ 톤 기관의 출력 _____ 마력 최대속력 _____ 노트
(Total Tonnage)(GT) (Engine Power) (HP) (Maximum Speed) (Knots)
6. 허가받은 자
(License Bearer)
소속·성명 또는 기관명 _____
(Name and Affiliation)
주소 _____
(Address)
7. 선장의 성명 및 주소 _____
(Captain's Name and Address _____)
8. 승무원 수 _____ 명
(No. of Crew Members)

380mm×268mm

(보존용지(1종) 120g/m²)

(2 쪽)

9. 무선통신 방법
(Radio Communication)

| | | |
|---------------------|--|-----------------------------------|
| 호출부호
(Call Sign) | 긴급호출 무선
통신연락 주파수
(Emergency Call Radio
Communication Frequency) | 무선전화주파수
(Radio Call Frequency) |
|---------------------|--|-----------------------------------|

10. 화물의 적재가능용량
(Cargo Capacity)

| | | |
|---------------|--------------|----------------------------|
| 종 류
(Type) | 수 량
(No.) | 선창용량
(Storage Capacity) |
|---------------|--------------|----------------------------|

11. 허가 내용

(Contents of License)

| 어업활동
기 간
(Period) | 어업활동
해 역
(Area) | 어업활동의
종 류
(Type of
Activities) | 허가어구
및 수량
(Gear Type
and No.) | 어업활동의
대 상 물
(Target
Species) | 대상물의
수 량
(Quantity of
Catch) |
|-------------------------|-----------------------|---|--|---------------------------------------|---------------------------------------|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12. 부속선의 선박 수: _____
(No. of Auxiliary Vessels)13. 부속선의 선명 및 제원
(Name and Specifications of the Auxiliary Vessel)

| 구 분
(Type) | 선 명
(Name of Vessel) | 총 톤 수
(Total Tonnage) | 마 력
(HP) |
|---------------|-------------------------|--------------------------|-------------|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14. 제한 또는 조건: 별첨

(Restrictions or Conditions): (Attached)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활동(어업 제외)을 허가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person and vessel have been licensed to conduct fishing-related activities(exclusive of fishing) in the EEZ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Article 5 of the Act on the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on Foreigner's Fishing, Etc. with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년 월 일
(Date:)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Official seal)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3.24>

(앞 쪽)

입어로 납부명세서

(Statement of Fishing Fee Payment)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아래 명세서와 같이 입어를 납부하였기에 그 내용을 통보합니다.

(I hereby notify that the fishing fee was paid as follows in accordance with Article 7 of the Act on the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on Foreigner's Fishing, Etc. with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년 월 일

(Date:)

_____국 _____ (서명)

(Country:) (Signature)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To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어업의
종 류
(Type of
Fishery) | 허가번호
(License
No.) | 신 청 인
주소·성명
(Name and
Address of
the Applicant) | 선박의
명 칭
(Name
of
Vessel) | 어 획
할당량
(톤)
(Quota
[ton]) | 어업의
기 간
(Period) | 입 어 료
(Fishing Fee) | | 비 고
(Remarks) |
|------------------------------------|--------------------------|---|--------------------------------------|---------------------------------------|------------------------|-----------------------------|-----------------------------|------------------|
| | | | | | | 금액(원)
(Payment
[won]) | 납부일
(Date of
Payment) | |
| | | | | |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 쪽)

| 어업의
종 류
(Type of
Fishery) | 허가번호
(License
No.) | 신 청 인
주소·성명
(Name and
Address of
the Applicant) | 선박의
명 칭
(Name
of
Vessel) | 어 획
할당량
(톤)
(Quota
[ton]) | 어업의
기 간
(Period) | 입 어 료
(Fishing Fee) | | 비 고
(Remarks) |
|------------------------------------|--------------------------|---|--------------------------------------|---------------------------------------|------------------------|-----------------------------|-----------------------------|------------------|
| | | | | | | 금액(원)
(Payment
[won]) | 납부일
(Date of
Payment) | |
| | | | | | | | | |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3.3.24>

허가증·승인증 재발급 신청서

(Application for Re-Issuance of License or Authorization)

1. 허가증(승인증)번호 _____
(No. of License[Authorization]) _____
2. 허가(승인)를 받은 자 _____
(License [Authorization] Bearer)
소속·성명 또는 기관명 _____
(Name and Affiliation) _____
주 소 _____
(Address) _____
3. 선박의 명칭 _____
(Name of Vessel) _____
4. 선박의 종류 _____
(Type of Vessel) _____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증 또는 승인증을 재발급받고자 신청합니다.

(In view of the original documentation having been lost or destroyed, I hereby request the reissuance of license[Authorization] which was already issued to m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Article 5 or Paragraph 1, Article 8 of the Act on the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on Foreigner's Fishing, Etc. with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년 월 일

(Date:)

신청인 _____ (서명)

(Applicant) _____ (Signature)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To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구비서류

1. 사유서[허가증(승인증)을 잃어버린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허가증(승인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Requirement): (Statement of Reasons for loss of the License[Authorization],
Destroyed License[Authorization])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3.3.24>

허가·승인사항의 변경신고서

(Report for Alteration of License or Authorization)

1. 허가증(승인증)번호

(No. of License[Authorization])

2. 허가(승인)를 받은 자

(License [Authorization] Bearer)

소속·성명 또는 기관명

(Name and Affiliation)

주 소

(Address)

3. 변경 사유

(Reasons for Alteration)

4. 변경 내용

(Contents of Alteration)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허가(승인)받은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경되었기에 신고합니다.

(I hereby report the above-mentioned alterations in the contents of my license[Authorization], which was issu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Article 5 or Paragraph 1, Article 8 of the Act on the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on Foreigner's Fishing, Etc. with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년 월 일

(Date:)

신청인 (서명)

(Applicant) (Signature)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To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구비서류: (Requirement)

1. 허가증(승인증) 사본 1부

(One copy of License[Authorization])

2.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Document to approve alteration)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3.3.24>

허가(승인)사항의 변경신고증

(Report Certificate of Alterations in a License[Authorization])

1. 허가증(승인증)번호 _____
(No. of License[Authorization]) _____
2. 허가(승인)를 받은 자 _____
(License[Authorization] Bearer)
소속·성명 또는 기관명 _____
(Name and Affiliation) _____
주 소 _____
(Address) _____
3. 변경허가(승인) 내용 _____
(Contents of Alteration) _____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허가(승인)받은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승인)사항의 변경신고증을 발급합니다.

(This is to certify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Article 12 of the regulations of the Act that the alterations in the contents of the license[authorization] which was issu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Article 5 or Paragraph 1, Article 8 of the Act on the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on Foreigner's Fishing, Etc. with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년 월 일
(Date:)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 [인]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Official seal)

신청인 _____ 귀하
(Applicant) _____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3.3.24>

(앞 쪽)

시험·연구 승인 신청서

(Application for Authorization for Catch or Collection of Aquatic Animals and Plants for Experimental or Research Purposes)

1. 시험·연구를 하려는 자

(Researcher)

소속·성명 또는 기관명

(Name and Affiliation)

주 소

(Address)

2. 선 박

(Vessel)

명 칭

(Name)

허가(등록)번호

(License(Reg.) No.)

총톤수

(Total Tonnage)

톤

(GT)

선장의 성명

(Name of the Captain)

3. 시험·연구의 목적

(Purpose of the experiment or research)

4. 승인신청의 내용

(Contents of the Application)

| 시험·연구 등의
예 정 해 역
(Expected Area of
Experimentation or
Research) | 포획·채취할
수산동식물의
종 류
(Target
Species) | 포획·채취의
방 법
(Methods of
Catch or
Collection) | 포획·채취
예정기간
(Expected
Period of Catch
or Collection) | 포획·채취
예 정 량
(Expected
Amount Catch
or Collection) |
|---|--|---|---|---|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8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시험·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등을 하고자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authorization for catch or collection of aquatic animals and plants for research purpose in the EEZ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Article 8 of the Act on the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on Foreigner's Fishing, Etc. with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 쪽)

년 월 일
(Date:)

신청인 _____ (서명)
(Applicant) (Signature)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To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구비서류(Requirement)

1. 시험·연구 승인을 신청한 선박이 자국의 법령에 따른 어업활동 동의 허가(면허·승인·신고 등을 포함합니다)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One copy of document verifying the vessel which applied for the approval of experiment and research has license for fishing, etc. [authorization, approval, report, etc. included] in accordance with its domestic laws.

2. 해당 어업방법에 대한 해설서(어업방법이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방법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Explanation of fishing methods[in case of fishing methods are greatly different from those of the Korea fisheries act])

3. 시험·연구 등의 계획서(시험·연구 등의 시기, 주된 시험·연구 구역, 어획계획량, 승선원 현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Plan of experiment and research, etc. [period and area of experiment and research, etc. planned catch amount, status of crew members should be included])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2.1.19>

시험·연구 승인대장

| 연월일 | 승인
번호 | 신청
국가 | 신청인의
주소·성명 | 어업의
종 류 | 선박의
명 칭 | 무선통신의 방법 | | | 시험·
연구 수역 | 승인
기간 | 시험·연구의
목적 | 수수료 | 행정
처분
상황 | 비고 |
|-----|----------|----------|---------------|------------|------------|----------|-----------------------|-------------------|--------------|----------|--------------|-----|----------------|----|
| | | | | | | 호출
부호 | 긴급호출
무선통신연락
주파수 | 무 선
전 화
주파수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

(일반용지 60 g / m²(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3.3.24>

(1 쪽)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시험·연구 등의 승인증
(Certificate of Authorization for Experimentation/Research in the EEZs of
the Republic of Korea)

1. 승인번호 _____
(Certificate No.)
2. 승인을 받은 자
(Certificate Bearer)
소속·성명 또는 기관명 _____
(Name and Affiliation)
주 소 _____
(Address)
3. 선 박
(Vessel)
명 칭 _____ 허가(등록)번호 _____
(Name) (License No.)
총톤수 _____톤 선장의 성명 _____
(Total Tonnage) (Ton) (Name of the Captain)
4. 시험·연구의 목적
(Purpose of the Experiment/Research)
.....
.....
5. 선박의 국적 _____
(Vessel's Nationality)
6. 선박의 제원
(Vessel Specifications)
총톤수 _____톤 기관의 출력 _____마력 최대 속력 _____노트
(Total Tonnage)(Ton) (Engine Power)(HP) (Maximum Speed) (Knots)
7. 승무원 수 _____명
(No. of Crew Members)
8. 무선통신의 방법
(Radio Communication)
호출부호 _____ 긴급호출 무선 _____
(Call Sign) 통신연락 주파수 _____ 무선전화주파수 _____
(Emergency Call Radio Communication Frequency) (Radio Call Frequency)
9. 화물의 적재가능용량
(Cargo Capacity)
종류 _____ 수량 _____ 선창용량 _____
(Type)..... (Amount) (Storage Capacity)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2 쪽)

10. 승인 내용

(Contents of Authorization)

| 시험·연구
등의 예정해역
(Area) | 포획·채취할
수산물식물의
종 류
(Target Species) | 포획·채취의
방 법
(Methods of
Catch or
Collection) | 활동예정
기 간
(Expected
Period of Catch
or Collection) | 포획·채취
예 정 량
(Expected
Amount Catch
or Collection) |
|----------------------------|---|---|---|---|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 | | | | |

11. 제한 또는 조건: 별첨

(Restrictions or Conditions): (Attached)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시험·연구 등을 승인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application for experimentation or research has been approv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Article 8 of the Act on the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on Foreigner's Fishing, Etc. With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년 월 일

(Date:)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

[인]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Official seal)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2.1.19>

(앞 쪽)

위 반 조 서
(Record of Violation)

1. 허가(승인)를 받은 자
(License · Authorization Bearer)
소속 · 성명 또는 기관명 _____
(Name and Affiliation)
주 소 _____
(Address)
2. 선장 또는 그 대리인
(Captain or Captain's Agent)
성 명 _____
(Name)
주 소 _____
(Address)
3. 어업활동 등의 종류
(Type of Fishing Activities).....
4. 어획물
(Type of Catches).....
5. 선박의 명칭
(Name of Vessel).....
6. 허가 · 승인번호
(License · Authorization No.).....
7. 계류예정항의 명칭
(Mooring Port).....
8. 위반일시
(Time of Violation).....
9. 위반 장소
(Area of Violation).....
10. 단속 장소
(Location where vessel was stopped)..
11. 적용 법조문
(Relevant Provisions).....
12. 압수물
(Items Confiscated).....

13. 사건 경위(Details Concerning the Violation)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 쪽)

14. 처분의견(Comments)

년 월 일
(Date:)

사법경찰관 직급 성명 인
(Official)(Grade).....(Name).....(Signature)

비 고: 체류항의 명칭은 선박을 계류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Remarks) (Name of "Mooring Port" is necessary only when the vessel is moored.)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3.3.24>

허가·승인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요구서

요구서 제 호

1. 허가(승인)를 받은 자

소속·성명 또는 기관명 _____

주 소 _____

2. 선박의 명칭 _____ 3. 허가·승인번호 _____

4. 위반사항

일 시 _____ 장 소 _____

내 용 _____

5. 행정처분 근거 법령

6.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처분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구비서류

1. 위반조서 1부

2.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또는 진술조서 1부

3. 위반사실 확인서 또는 그 밖에 위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처분 요구 기관장) _____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2.1.19>

| | 제
(No.) | 호
() |
|---|--|----------|
| 행정처분 통지서
(Notice of Administrative Measures) | | |
| 1. 허가(승인)를 받은 자
(License[Authorization] Bearer)
소속·성명 또는 기관명 _____
(Name and Affiliation) _____
주 소 _____
(Address) _____ | | |
| 2. 선박의 명칭 _____
(Name of Vessel) _____ | 3. 허가·승인번호 _____
(License[Authorization] No.) _____ | |
| 4. 위반사항
(Contents of Violation)
일 시 _____ 장 소 _____
(Time) _____ (Place) _____
내 용 _____
(Contents) _____

_____ | | |
| 5. 근거 법령 _____
(Related Acts and Regulations) | | |
| 6. (경고의 경우)시정사항(For Warn)(Action to be Taken)

_____ | | |
| 7. (경고의 경우)시정기한: 년 월 일까지
(For Warn)(Action to be Taken by _____) | | |
| 위의 자 및 선박은 위와 같이 법령을 위반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따라 어업활동 등에 대한
[경고(정지)를 명합니다.
허가(승인)를 취소합니다. | | |
| (This is to certify the [warn, suspension, cancellation] of the license for
fishing-related activities for the above-mentioned person and vessel, as a
result of the above-mentioned viol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 of the
Act on the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on Foreigner's Fishing, Etc. with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 | |
| ☐ (정지처분의 경우) 어업활동 허가(승인)의 정지처분기간
(For Suspension) (Period of Suspension of the License[Authorization])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FROM TO) (For.....days)
년 월 일
(Date:)
행정처분기관의 장 _____ 인
(Chief of Administrative Office).....(Official seal)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2.1.19>

외국선박 행정처분 상황기록부

| 행 처 분
번호 | 행 처 분
연월일 | 국가명 | 허 가
·
승 인
번호 | 외국인
의
주소·
성명 | 선박의
종 류 | 단 속 일 | 행 처
내 용 | 근 거
법 조 문 | 행 처
기 관 | 단 속
사 법
경찰관 | 단 속
해 역 | 사 건
번호 | 비 고 |
|-------------|--------------|-----|-----------------------|-----------------------|------------|-------|------------|--------------|------------|-------------------|------------|-----------|-----|
| | | | | | | | | | | | | | |

297mm×210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2.1.19>

승선조사 결과보고서

1. 선박의 국적 _____ 2. 승선조사 일시 _____
3. 허가(승인)를 받은 자
소속·성명 또는 기관명 _____
주 소 _____
4. 선 장
성 명 _____
주 소 _____
5. 어업활동 등의 종류 _____
6. 선박의 명칭 _____ 7. 허가·승인번호 _____
8. 어획물의 종류 및 수량(톤수) _____

9. 승선조사 시 발견한 특이사항 _____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위의 선박에 승선하여 조사한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2.1.19>

외국선박 승선조사 상황기록부

| 조 사
일 시 | 조사자
소 속 | 조사자
직급
· 성 명 | 국가명 | 허 가 ·
승인번호 | 외국인의
주소 · 성명 | 선박의
종 류 | 선박의
명 칭 | 어획물의
종류 및
수량 | 승선조사 시
발견한
특이사항 | 비 고 |
|------------|------------|--------------------|-----|---------------|-----------------|------------|------------|--------------------|-----------------------|-----|
| | | | | | | | | | | |

297mm×210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2.1.19>

어획실적보고서
(Catch Report)

| | | | |
|----------------------------------|--|---|--------------------------------|
| 선박의 국적
(Vessel's Nationality) | | 선 질
(Building Materials) | 강선·목강선
(Iron·Wood and Iron) |
| 본선총톤수
(Mother Ship's Tonnage) | |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자의 성명
(License or Authorization Bearer's Name) | |
| 본선마력
(Mother Ship's HP) | | 선장의 성명
(Captain's Name) | |

| | | | |
|---|--|-------------------------------------|--|
| 허가·승인번호
(License or Authorization No.) | | 입항일
(Port Entry Date) | |
| 어획할당량
(Quota) | | 항해일수
(Period of Voyage, in days) | |
| 출항일
(Port Departure Date) | | 조업일수
(Fishing Period, in days) | |

(단위 : M/T)

| MONTH | TOTAL | 어 류(Fishes) | | | | | | | | | | | | | | | | | | | | 갑각류
(CRUSTACEA) | | | 연체동물
(MOLLUSCA) | | | | 기타 | |
|-------|----------|---------------------------|-----------------------|-----------------------|---------------------------------|---------------------------------|--------------------------|----------------------|---------------------|------------------------|------------------------|--------------------------|------------------------|--------------------------------|-----------------------|---------------------------------|--------------------------|-----------------------------------|---|---------------|----------------------|---------------------------|------------------------|---------------|-------------------------------------|----------------|-----------------------|-------------------------|------------------------------------|--|
| | | 가자미류
(FLOUN-
-DERG) | 명태
(POLLA-
-CK) | 병어
(POMFR-
-BT) | 참조기
(REDLIP
CROAKE-
R) | 기타조기
(OTHER
CROAKE-
R) | 강달이
(CONVE-
-NIAC) | 갈치
(HAIR
TAIL) | 붕장어
(SEA
BEL) | 양미리
(SAND
LANCE) | 복어류
(PUFFE-
-RO) | 멸치류
(ANCHO-
-VIEG) | 정어리
(GARDIN-
-E) | 전어
(HICKO-
RYSHA-
-D) | 청어
(HERRIN-
-G) | 밴댕이
(ROUND
HERRIN-
-G) | 고등어
(MACKE-
-RELS) | 전갱이류
(JACK
MACKE-
-RELS) | 삼치류
(SPANIC-
-H
MACKE-
-RELS) | 꽂치
(CAURY) | 아귀
(MONK
FISH) | 기타어류
(OTHER
FISHES) | 새우류
(SHRIM-
-PS) | 게류
(CRABS) | 기타갑각류
(OTHER
CRUSTA-
-CEA) | 오징어
(SQUID) | 문어
(OCTOP-
-US) | 낙지
(ROULPE
SQUID) | 기타연체류
(OTHER
MOLLU-
-SCA) | 기타수산물
(OTHER
AQUATIC
ANIMALS) |
| | CODE NO. | 001 | 002 | 003 | 004 | 005 | 006 | 007 | 008 | 009 | 010 | 011 | 012 | 013 | 014 | 015 | 016 | 017 | 018 | 019 | 020 | 021 | 022 | 023 | 024 | 025 | 026 | 027 | 028 | 029 |
| TOTA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 어획량이 1톤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로 표시하십시오.(unit : calculate the amount of production less than 1 ton, to one place of decim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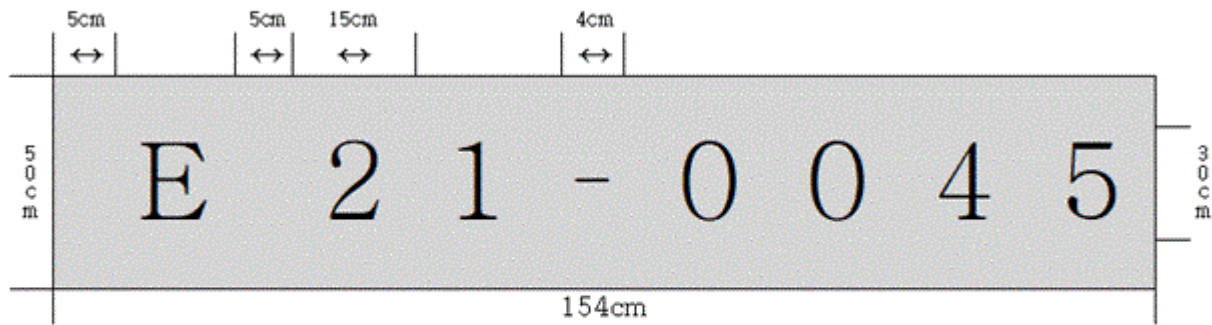
■ 선실: 해당 난에 ○표 하시오.(Building materials : Mark ○ in the given column).

364mm×25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도] <개정 2012.1.19>

어업활동 허가번호판 또는 시험·연구 승인번호판의 규격 및 재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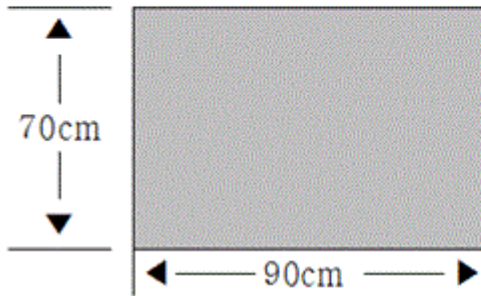


1. 바탕 부분은 검은색, 문자 부분은 허가의 경우에는 노란색으로, 승인의 경우에는 흰색으로 한다. 다만, 부속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속선의 문자 부분은 파란색으로 한다.
2. 표지에는 야간에 약자와 번호를 알아볼 수 있도록 도료를 칠한다.
3. 재질은 알루미늄 또는 동관의 금속재이거나 합성수지재의 내부식성(耐腐蝕性) 재료로 제작해야 한다.

[별지 제2도] <개정 2021. 6.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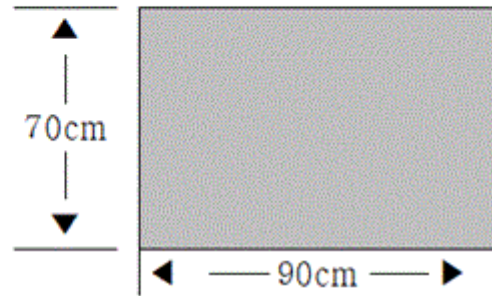
표지깃발의 규격 및 재질

1. 입역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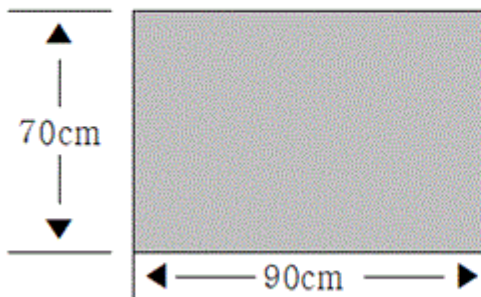
재질: 노란색 천

2. 출역의 경우



재질: 녹색 천

3. 어업활동 또는 시험·연구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재질: 붉은색 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시행 2017. 3. 21.] [법무부령 제893호, 2017. 3. 21., 일부개정]

법무부 (국제형사과) 02 - 2110 - 38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선박등에 대한 사법절차와 담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반선박등에 대한 조치) ①검사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선박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기타 위반자(이하 “위반자”라 한다)에 대하여 정선·승선·검색·나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반선박및위반자조치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이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반선박및위반자조치지휘건의서에 의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여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반선박및위반조치결과보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사법경찰관이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반선박및위반자조치결과보고서에 의한다.

제3조 (담보금납입 등) ①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검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담보금결정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여 위반자에게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검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담보금결정서를 2부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이를 해당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여 그중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하게 하고, 다른 1부는 위반자에게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금결정서를 송부받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기록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란의 소정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담보금이 납입되거나 담보금보증보험증권이 첨부된 담보금보증서가 제출된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담보금(담보금보증서)영수필보고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보관표를 인계받아 검사의 확인인을 받은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 (위반자의 석방 등) ①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자에 대한 담보금이 납입되거나 담보금보증서가 제출된 때에는 검사는 위반자를 즉시 석방하고, 위반선박 및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위반자석방및위반선박등환부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해당법경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검찰청에 수리되어 있는 압수물의 환부절차에 관하여는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4장제5절 및 제5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담보금의 국고귀속) ①검사는 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담보금국고귀속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금국고귀속서를 송부받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기록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담보금국고귀속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보관표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담보금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에는 즉시 별지 제11호서식의 담보금보증보험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증보험회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담보금보증보험금을 송부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조 (담보금의 환부 등) ①검사는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사유에 의하여 담보금이 국고에 귀속되기 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반자 또는 담보금을 납입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담보금을 환부하여야 한다.

1. 법원에서 선고한 벌금액이 납부된 때
2.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
3. 기타 담보금을 계속 보관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금환부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사유를 확인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보관표의 명령란에 사유를 기재하여 검사의 환부명령과 날인을 받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기록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보관표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담보금보증보험증권의 환부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30일이내에 환부청구가 없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관표의 명령란에 검사의 폐기명령과 날인을 받아 별지 제5호서식의 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기록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보관표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부칙 <제450호,1997. 8. 7.>

이 규칙은 1997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3호,2017. 3.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위반선박 및 위반자조치서 | | | | |
|--|------------|---|---------|---------|
| 선
박 | ①선 박 명 | | | |
| | ②허가·승인번호 | | | |
| | ③선 적 국 | | | |
| | ④선 박 의 종 류 | | | |
| | ⑤총 톤 수 | | | |
| | ⑥승 선 자 | 선장 | (국적 :) | 외 |
| <p>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을 위반
한 선박 및 선장 기타 위반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함</p> <p style="text-align: center;">. . .</p> <p style="text-align: center;">○○○○검 찰 청</p> <p style="text-align: right;">검사 ㉠</p> | | | | |
| ⑦정 선·승 선·검 색 일
시·장 소 | | | | |
| ⑧위 반 일 시·장 소
및 사 실 | | | | |
| ⑨위 반 사실 확인 후
조치 | | ()나포·억류 () 기타 조치 | | |
| ⑩선 박 억 류 장 소 | | | | |
| ⑪위 반 자 | 직 책 | 성명(국적) | 생 년 월 일 | 억 류 장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3호서식]

| | | | | |
|---|------------|---|---------|---------|
| (기 관 명) | | | | |
| 수 신 검찰청 | | | | |
| 제 목 위반선박및위반자조치결과보고 | | | | |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
률 을 위반한 선박 및 선장 기타 위반자에 대한 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
니다. | | | | |
| 선
박 | ①선 박 명 | | | |
| | ②허가·승인번호 | | | |
| | ③선 적 국 | | | |
| | ④선 박 의 종 류 | | | |
| | ⑤총 톤 수 | | | |
| | ⑥승 선 자 | 선장 | (국적 :) | 외 |
| ⑦정 선·승 선·검 색 일
시·장 소 | | | | |
| ⑧위반일시·장소 및 사실 | | | | |
| ⑨위 반 사실 확인 후
조 치 | | ()나포·억류 () 기타 조치 | | |
| ⑩선 박 억 류 장 소 | | | | |
| ⑪위 반 자 | 직 책 | 성명(국적) | 생 년 월 일 | 억 류 장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⑫급 속 을 요 한 사 유 | | | | |
| (기 관 명) | | | | |
| 사법경찰관 ㉠ | | | | |
| 검 사 지 휘 | ㉡ | |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4호서식]

(앞 면)

| 담 보 금 결 정 서 | | |
|--|------------|---------------|
| 선
박 | ①선 박 명 | |
| | ②허가·승인번호 | |
| | ③선 적 국 | |
| | ④선 박 의 종 류 | |
| | ⑤총 톤 수 | |
| | ⑥승 선 자 | 선장 (국적 :)외 명 |
| <p>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을 위
반한 위 선박의 선장 기타 위반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담보금을 정함</p> <p style="text-align: center;">. . .</p> <p style="text-align: center;">○○○○검 찰 청</p> <p style="text-align: right;">검사 ㉠</p> | | |
| ⑦위 반 자 | 성 명 | (국적:) |
| | 생 년 월 일 | |
| | 억 류 장 소 | |
| ⑧위반일시·장소및사실 | | |
| ⑨담 보 금 | | 원 |
| ⑩비 고 | | |

※ 담보금의 납입에 갈음하여 보증보험증권첨부의 담보금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비고란에 기재하고 날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뒷 면)

안 내 문

1. 앞면에 기재된 담보금을 우리청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담보금의 납입에 갈음하여 담보금보증서의 제출이 허가된 때에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담보금보증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담보금 납입 또는 보증서 제출시 이 결정서를 우리청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2. 담보금을 납입하실 경우 귀하를 석방하고, 위반선박 등을 환부할 것입니다.
3. 담보금은 귀하의 출석 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유발생시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 담보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가. 법원 또는 검사의 출석명령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나. 법원 또는 검사의 압수물제출명령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담보금이 국고에 귀속되기 전에 법원에서 선고한 벌금액을 납부하였거나, 귀하에 대하여 무죄·면소·공소기각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담보금의 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담보금의 납입 등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우리청 검사실(전화 : , 담당자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5호서식]

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기록표

| | | | |
|------------------|-----------------------------------|--|-------------------------------|
| | | 19 담보금석방 제 호 | |
| 19 형 호 | | 19 고단(합) 호
19 노 호 | 주임검사 |
| ①위 반 자 | 성 명 | (. . 생) | |
| | 국 적 | | |
| | 자국주소 | | |
| | 승선선박 | (선적국 :) | |
| ②담 보 금 | 원 | | ⑨형 명 .형 기 |
| ③납 입 종 별 | ()담보금납입
()담보금보증서제출 | | ⑩상 소 제 기 년 월 일 |
| ④납부(제출)인 | | | ⑪재 판 확 정 년 월 일 |
| ⑤납부(제출)일 | 년 월 일 | | ⑫벌 금 납 입 |
| ⑥석 방 지 휘 | 년 월 일 | | ⑬국 고 귀 속 년 월 일 |
| ⑦공 소 제 기 | 년 월 일 | | ⑭집 행 지 휘 년 월 일 |
| ⑧재 판 월 일 | 년 월 일 | | ⑮환부(폐기)일 년 월 일 |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m²)

[별지 제6호서식]

(앞 면)

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명부

| | | |
|----------------------|--------|--------|
| ①진행번호 | 제 호 | 제 호 |
| ②형제번호 | 년 형제 호 | 년 형제 호 |
| ③주임검사 | | |
| ④위반자 | | |
| ⑤국적 | | |
| ⑥자국내주소 | | |
| ⑦위반자역류장소 | | |
| ⑧위반선박 | | |
| ⑨위반선박역류장소 | | |
| ⑩담보금 | | |
| ⑪담보금납입종별 | | |
| ⑫담보금(보증서)
납입(제출)인 | | |
| ⑬담보금(보증서)
납입(제출)일 | . . . | . . . |
| ⑭석방지휘일자 | . . . | . . . |
| ⑮국고귀속일자 | . . . | . . . |
| ⑯국고귀속사유 | | |
| ⑰국고귀속금액 | | |
| ⑱재판결과 | 선고일자 | . . . |
| | 형명형기 | |
| ⑲보증금환부
(폐기)일자 | . . . | . . . |
| ⑳비고 | | |

※ 압수물이 있을 경우 비고란에 압제번호를 기재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m²)

(뒷면)

| 제
년 | 형제
호 | 제
년 | 형제
호 | 제
년 | 형제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 3. 21.>

담보금(담보금보증서)영수필보고서

수 신 :

| | | | |
|---------|-------|---------|--|
| 보 관 번 호 | 년 제 호 | | |
| 사 건 번 호 | 년 제 호 | | |
| 법원사건번호 | 년 제 호 | | |
| 생 년 월 일 | | 납 입 인 | |
| 납 입 금 액 | | | |
| | | | |
| 위 반 자 | | 주 임 검 사 | |
| 보 관 종 별 | | 징 수 주 임 | |

위 금액을 수령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8호서식]

| ○○○○검찰청
보 관 표 | | | | | |
|------------------|------------|------|----------------------|--------|------|
| ①진행번호 | 제 호 | | ②사건번호 | 제 호 | |
| ③주임검사 | | | ④위 반 자 | | |
| ⑤납입금액 | 금 | | ⑥납 입 인 | | |
| ⑦종 류 | 담 보 금 | | ⑧납 입 | . . . | |
| ⑨명 령 또는
통지연월일 | ⑩주임검사
인 | ⑪명 령 | ⑫출 납 공 무 원
또는취급주임 | ⑬지 불 액 | ⑭잔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

(신문용지 54/m²)

[별지 제9호서식]

| | | |
|---|-----------------|-----------|
| ○○○○검찰청
(전화번호) | | |
| 집계 | 호 | |
| 수 신 | (기관장) | 발 신 |
| 제 목 | 위반자석방및위반선박등환부지휘 | 검 사 |
| 검찰청
㉠ | | |
| <p>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
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포·억류된 아래 위반자의 석방 및 위반선박 기
타 압수물품의 환부를 지휘함</p> | | |
| 위반선박 | ①선 박 명 | |
| | ②선 적 국 | |
| | ③선박용도 | |
| | ④총 톤 수 | |
| ⑤위 반 사 실 | | |
| ⑥나 포 ·억 류 연 월 일 | | |
| ⑦위 반 자 | 성 명 | (. . .생) |
| | 국적및주소 | |
| ⑧환 부 물 품 | | |
| ⑨석 방 및 환 부 사 유 | | |
| ⑩비 고 |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10호서식]

| 담 보 금 국 고 귀 속 서 | | |
|--|--|------------|
| 위
반
자 | ①성 명 | (. . . 생) |
| | ②국 적 | |
| | ③승 선 선 박 | (선적국 :) |
| | ④위 반 사 실 | |
| <p>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위반자에 대한 담보금이 아래와 같이 국고 귀속되었음</p> <p style="text-align: center;">. . .</p> <p style="text-align: center;">○○○○검찰청</p> <p style="text-align: right;">검사 ㉠</p> | | |
| ⑤담 보 금 | 원 | |
| ⑥담보금보증보험증서 | | |
| ⑦담보금국고귀속일 | . . . | |
| ⑧담보금국고귀속사유 | () 검사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지정기일 불출석
() 법원의 출석명령을 받고도 지정기일 불출석
() 검사의 압수물제출명령 위반
() 법원의 압수물제출명령 위반
() 기타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11호서식]

| | | | | |
|--|----------------|------------------|--------|-----|
| ○○○○검찰청
(전화번호) . . . | | | | |
| 수 신 보증보험회사 대표이사 | | 발 신 | | 검찰청 |
| 제 목 담보금보증보험금지급청구
(인) | | 검 사 | | |
| 아래 담보금보증보험금에 대하여 . . . 배타적경제수역
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담보금이 국고귀속되었으므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 | | |
| 증 권 번 호 | | 제 호 | | |
| 보 험 계 약 자 | | | 피 보험 자 | |
| 담보금납입
지 시 내 용 | 사건번호 | | 사 건 명 | |
| | 위 반 자 | (. . . 생, 국적:) | | |
| | 담 보 금
보증보험금 | 원 | | |
| 불 임 : 1. 담보금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
2. 담보금국고귀속서 1부 | | |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해사법규 시험대비

제 작 자 : 박진홍

제작일자 : 2026. 9.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